

백서 [III]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5. 사법농단 관련 문건



발 간 사

2018년 10월 27일 새벽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2017년 3월 초순경 언론이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겸임해제 사건을 보도하자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1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단은 실질적인 조사는 하지도 않고 조사 시늉만 하였다.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그해 11월에 대법원은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원에서 진일보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당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진상조사위원회는 관련 자료의 입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법원은 2018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였고 그해 5월 25일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른바 대법원 3차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위 특별조사단의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상당했다. 그러나 이후의 과정은 국민들의 실망과 한탄과 우려만을 낳았다. 특별조사단이 그 조사내용을 공개하는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국민들은 대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믿었으나 대법원은 결국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민변은 2018년 5월 25일 위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는 직후에 50여 명의 회원들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를 구성하였다. T/F는 먼저 사법농단 관련 전체 사건들에 대하여 법률적인 분석과 해설을 한 '이슈리포트'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슈리포트는 언론에 배포하는 용도였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참고하기를 바랐다.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이슈리포트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전언이 있었다.

사법농단 수사의 1차적인 어려움은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이었다. 수사 단초로서의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무더기로 기각되면서 통상 90%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사법농단 수사에서는 발부율이 10% 미만이었다. 10%의 영장발부율도 그나마 '사법행정왜곡' 사건에 대하여 발부된 것이고 '재판관여' 사건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발부율은 1% 정도였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약속은 영장전담판사들이 전면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형국이 되었다. 심지어 유해용 변호사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들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즉시 폐기처분하였고,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은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휴대폰을 파괴하거나 폐기처분하였다. 법원의 전, 현직 판사들은 한몫이 되어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폐기하고 각종 영장을 기각하면서 국민을 기만하였다.

이에 T/F에서는 민변 역사상 최초로 1인 시위를 결정하였다. 민변은 2018년 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과 동문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여 10월 31일까지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변호사들에게 1인 시위는 그리 친숙하지 않았다. 경험을 해본 변호사들도 있었지만 상당수 변호사들

은 1인 시위를 처음으로 하였다. 더욱이 그 장소가 일상 재판을 하러 다니는 법원이었으므로 마음이 불편 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음으로 양으로 이를 격려해주는 판사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많은 위로가 되었다. 민변 사상 처음으로 연인원 1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1인 시위에 동참하였다. 지부에서도 독자적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 민변 회원들이 사법농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굳센 의지로 1인 시위를 이어가던 와중에 드디어 임종현이 구속되었다. 임종현은 원세훈 댓글공작 사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범의노조 사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사건 등 사법농단의 핵심적 지위에 있었기에 그의 구속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2019년 1월 24일 새벽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판사들은 엘리트 집단으로 통칭된다. 늦은 밤까지 서초동의 거대한 법원 건물은 불빛이 꺼질 줄을 모른다. 판사들은 그 불빛을 정의의 나침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또한 자부심을 느꼈을 터다. 1990년대 중반부터 법조비리의 대책으로 법원은 판사들과 변호사들을 포함한 일반인과 사이에 장벽을 치기 시작하였다. 변호사가 판사를 방문할 때에는 방문대장에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다음에는 허가를 받으라고 하였고 이윽고 유리문으로 막아버렸다. 유리장벽이 변호사와 판사들 사이의 비리를 막는 장치라고 한다면 판사들은 다른 방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더 지속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 상고법원의 방안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올바른 방법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실행 방법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방안만을 절대시하였고 심지어 이를 위하여 국가권력에 아부하고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사법농단의 매듭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부터 풀어야 한다. 판사들은 수사를 하는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누가 감히 누구를 수사하느냐는 반발을 하였다. 검찰이 순수하고 결점이 없어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검찰의 문제는 검찰개혁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법원은 통상 90%를 상회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보여왔다. 법원은 압수수색에 있어서 피의사실 '관련성'의 개념을, ① 압수수색시점 시점으로, ②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③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④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⑤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라면,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왔다. 그것이 사후적으로 전혀 압수수색의 계기가 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환부 내지 폐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오직 사법농단 사건 관련하여만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혹은 '압수대상 물건이 존재할 개연성이 없다'는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적어도 법원과 관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건에서만은 최소한의 기본을 지켜야 했다. 법원 판결의 정당성은 헌법이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 판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 기초하는 것

이다.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 존립의 근거가 되는 반면 이러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아니하여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불가침의 독립성을 헌법이 보장하는 이유는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요 특징은 이들에게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재판 결과는 사법농단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예견하였던 바이다. 민변은 이러한 예견에 근거하여 특별재판부에서의 재판을 요구해왔다. 다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국면이다.

민변은 또한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였다. 2021년 2월 4일 국회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사법농단 판사들은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처분이 정직 1년에 불과해 설령 징계절차를 통해 최고 정직 1년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들이 언제든지 재판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파면을 통해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아직 피해자들의 구제까지 험난하고 기나긴 여정이 남아 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방식을 통해 사법농단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변은 혼신의 노력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결국은 법원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분들은 사법개혁의 소망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 백서가 사법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되었으면 한다.

2021. 5. 10.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변호사 천 낙 봉

목 차

1. T/F 구성현황	백서 [I]
2. 사법농단 일지	백서 [I]
3. T/F 회의 일지	백서 [I]
4. 법원 조사보고서	백서 [I]
5. 사법농단 관련 문건	백서 [II]
6. 공동고발장	백서 [III]
7. 이슈페이퍼	백서 [III]
8. UN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 긴급청원	백서 [III]
9. 사법농단 관여 법관 시민사회 탄핵소추안	백서 [IV]
10. 사법농단 관련 특별법 법안	백서 [V]
11. 사법농단의 기록 [민주변론 기고]	백서 [V]
12. 사법농단 관련 토론회 등 자료집	백서 [VI]
13. 성명, 논평 등	백서 [VII]
14. 사법농단 관여 법관 형사 판결문	백서 [VIII]
15. 법관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	백서 [IX]

5

사법농단 관련 문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의 방향 (대외비)

2015. 8. 19.

국제인권법연구회

1.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분과위원회)

가. 연구회 설립 경과

- 2011. 6. 법관 33명이 법원행정처장께 연구회 설립허가 요청¹⁾
- 2011. 8. ○○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임시간사),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 및 회원가입 안내’ 공지
 - 발기인 대표, 김○○ ○○고법 부장판사
 - 공지된 ‘활동 계획’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응답
 -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 성과의 정리 및 정보의 공유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심포지엄, 외부강연 등 학술모임의 개최
 - 초기 회원들 : 김○○, 김○○, 김○○, 김○○, 김○○, 김○○, 나○○, 류○○, 박○○, 사○○, 서○○, 송,○○ 안○○, 유○○, 윤○○, 이○○, 이○○, 이○○, 이○○, 정○○, 차○○, 최○○, 홍○○, 황○○ 등
- 2011. 10. 21. 창립총회
 - 선출 : 회장 김○○, 간사 겸 학술총무 이○○, 문화총무 이○○, 소모임총무 이○○
- 2012. 11. 30. 총회
 - 선출 : 회장 유임, 간사 유○○, 학술총무 김○○, 기획총무 김○○

1)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2조



■ 2013. 11. 22. 총회

- 선출 : 회장 김○○, 간사 김○○, 학술총무 안○○, 기획총무 신○○
- 주요 논의내용
 - 법관론, 사법부의 독립 등
 - 김○○ 부장판사의 제안으로, 소모임(분과위원회)²⁾ 구성을 top-down 아닌 bottom-up 형식으로 구성하기로 함 ⇒ 이에 따라 2013. 11. 김○○ 부장판사가 ‘난민법 소모임’ 을, 2014. 2. 김○○ 판사가 ‘법관론 소모임’ 을, 2014. 3. 허○○ 판사가 ‘표현의 자유 소모임’ 을 각 제안
 - 2014. 1. 커뮤니티 밴드 개설

■ 2014. 11. 21. 총회

- 선출 : 회장 이○○,³⁾ 간사 김○○
- 2014. 11. ‘인권편람’ 번역작업 완료 : 연구회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제4장 법관, 검사, 변호사의 독립과 공정성’
- 2014. 12.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 : 김○○, 나○○, 오○○, 이○○, 임○○, 홍○○
 - 총무(팀장) : 학술 강○○, 기획 송○○, 홍보 윤○○, 정책 이○○, 국제협력 현○○
 - 분과위원회(소모임) 위원장 : 법관론 미정, 표현의 자유 김○○, 난민법 안○○
 - 2014. 12. 이○○ 판사가 ‘소수자인권 소모임’ 을 제안

나. 소모임 관련

- 연구회 내 소모임은 ‘분과위원회’와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위에서 본 바와

2)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칙 제6조 (분과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① 연구회는 세부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간사 또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분과위원회 총무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3) 2014. 6. 김○○ 고등부장이 김○○, 성○○, 이○○ 세 고등부장에게 “연구회 내에 본인 외에는 고등부장이 한 분도 없다, 가입해서 후배들을 도와 달라.”고 제안하여 새 부장판사가 가입하였음



같이 회원 5명 이상이 모여 bottom-up 형식으로 구성됨

- 소모임 대표(분과위원장)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체적으로 대표를 선정하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이 관례임

2.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약칭 “인사모”)⁴⁾

가. 설립 및 예비모임의 경과

■ 2015. 7. 7. 박○○ 판사의 제안

■ 2015. 7. 21.자 첫 예비모임

- 이○○ 부장판사 등 12인 참석 (뒷풀이에 未詳 2인 더 참석)
- 선출 : 분과위원장(대표) 김○○, 총무 박○○, 김○○
- 주요 논의 내용 : 법관사회 내부의 소통, 사무분담, 상고법원 등

■ 2015. 8. 11.자 두 번째 예비모임

- 이○○ 부장판사 등 16인 참석
- 총무 2인 중 김○○ 부장판사가 빠지고 박○○ 판사가 제1총무로 선출됨
- 주요 논의 내용 : 상고법원⁵⁾
 - 가칭 ‘상고법원 끝장 토론회’ 로 모임 명칭 부여
 - 이○○ 부장판사가 찬성론, 이○○ 부장판사가 반대론으로 각 기조발표 후 난상토론 ⇒ 결론을 내지는 않음

나. 향후 일정

- 정식 첫 모임 : 2015. 9. 14. 월요일, 주제는 ‘합의부의 운용’ (재판장과 배석의 관계)
- 차후 예상 논의 주제 :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4) 주요 내용은 별첨 1, 2의 2015. 7. 21.자 및 2015. 8. 17.자 각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제도소 모임 관련 보고서 참조

5) 주요 내용은 별첨 4의 ‘인사모 1회 모임 정리’ 문건 참조



3. 문제점 검토

가. 연구회의 성격

▣ 우리법연구회와의 관련성

- 발기인 대표 김○○ 부장판사 등 초기의 주요 회원들이 1988년 이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관련이 깊음⁶⁾
- 우리법연구회가 2009년 말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어 활동이 어렵게 되자 2011년 새로이 창설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참여적 · 진보적 색채

- 노동법연구회나 젠더법연구회, 변협 인권소위원회 등과의 공동세미나 활동에서 노동, 인권, 소수자 등 주로 사회적 성격이 강한 주제를 논의
- 표현의 자유(‘일베’와 명예훼손 등), 소수자 보호, 난민, 법관의 독립, 양심적 병역거부 등 소모임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주로 진보적 입장에서의 이론을 전개

▣ 주요 회원의 강한 유대관계

- 2015. 8. 현재 전체 회원 수는 405명에 이룸
 - 인권편람 번역본 수령과 관련하여 2015년에만 1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함
 - 다른 커뮤니티에 비하여 30기 이하의 젊은 법관 회원이 많음

6) 2010. 5. 공개된 우리법연구회 회원 60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음(괄호 안은 당시 소속)
▽ 부장판사급 = 오○○(수원지법 성남지원) 문○○ 이○○(부산지법) 김○○(수원지법) 최○○(인천지법) 박○○(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울산지법) 사○○ 유○○ 이○○(사법연수원) ▽
평판사 = 박○○ 권○○ 김○○ 이○○ 이○○ 홍○○(서울고법) 권○○ 조○○(부산고법) 김○○ 박○○(특허법원) 문○○ 박○○ 서○○ 윤○○ 이○○(서울중앙지법) 김○○ 최○○(서울행정법원) 마○○(서울가정법원) 이○○(서울동부지법) 곽○○(서울남부지법) 변○○(서울북부지법) 문○○(서울서부지법) 장○○(의정부지법) 박○○ 박○○(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유○○ 이○○ 임○○(수원지법) 구○○ 김○○ 서○○ 송○○(부산지법) 문○○ 위○○ 이○○(부산지법 동부지원) 김○○ 문○○ 최○○ 홍○○(창원지법) 김○○(창원지법 진주지원) 성○○(대전지법) 강○○(대전지법 홍성지원) 박○○(광주지법 목포지원) 이○○(전주지법) 박○○(전주지법 정읍지원) 김○○ 최○○ 한○○(대법원 재판연구관) 장○○(사법연수원) 정○○(헌법재판소 파견)



- 전체 회원 중 정기세미나 및 정기총회에 자주 참석하거나 커뮤니티 내 댓글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소위 '주요 회원' 수는 약 30명 정도로 파악되고, 특히 이들 중 일부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야법조인들과 'Inner Circle'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요 회원 이외의 회원들 대부분은 국제적 시각에서 본 인권 분야의 연구 혹은 제대로 된 인권법 공부를 위해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으나, 회원들 중 진보적 성격의 일부 젊은 법관들이나 인사문제 등 대법원에 불만을 가진 일부 법관들은 사안별, 주제별로 주요 회원의 의견이나 논리에 강한 동조를 보이고 있음
- 젊은 법관들 중 유학을 다녀오거나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OHCHR), EU 내 인권 관련 기관 등 국제기구 관련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연구회 활동에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특히 같은 연구회 소속 이○○ 판사의 사망이나 박○○ 판사의 폐암 발병 등을 접한 후, 모금활동은 물론 이를 계기로 법관의 업무부담 개선, 이를 논거로 한 상고법원 설치 반대 등 대법원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다른 연구회와 달리 임원진 및 부장판사들의 찬조금 출연, 그들 주도의 회식문화 등 고참 기수들에 대한 '선배'로서의 역할 요구가 당연시되는 등 특정 분야 연구를 위한 모임이라기보다는 私조직과 같은 인적 결합체로서의 분위기가 강함
- 요컨대, 주요 회원들과 일부 젊은 법관 회원들은 강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단결된 유대관계를 보이고 있음

나. 인사모의 문제점

■ 윤리규정 위반은 없음

7) 주요 내용은 별첨 3의 2015. 8. 17.자 이○○ 판사 관련 보고서 참조



- 인사모 활동이 법관의 단체활동 내지 연구활동에 관한 법관윤리강령 등 윤리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함 (⇒ 윤리감사관실의 검토를 거침)
- 외국의 법관윤리규정(벵갈로어 법관행동준칙 주석 138.)도, 법관이 법원 운영 등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관하여 외부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

**법관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외부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A judge may speak out on matters that affect the judiciary)**

138. 법관이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절하게 외부에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는 그 논쟁이 법원 운영, 사법부 독립(법관의 보수와 혜택을 포함하는), 법 집행의 근본적인 측면, 또는 법관 개인의 청렴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경우에도 법관은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법관이 이들 문제에 관하여 정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로비'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되고 그 문제가 법원에 사건화 되었을 때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암시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도 안 된다. 나아가 법관은 그의 논평이 사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때때로 사법부의 견해가 아닌 순전한 법관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법관은 법과 관련된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A judge may participate in a discussion of the law)

139. 법관은 교육적인 목적이거나 법의 약점을 지적하기 위한 법 관련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법관이 법안에 대하여 논평하는 것이 유익하고 적절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위헌 여부에 관해 비공식적인 해석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견해 제시는 피하여야 한다. 보통의 경우, 법안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견해표명은 실무적 영향이나 법안의 흠결사항과 관련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쟁점은 피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법적 의견표명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사법부 전체로서 또는 기관으로서의 노력의 결집 형태로 행하여져야 한다.

■ 연구회 내 소모임 활동의 적절성 有無

- 그러나 연구회는 대법원에 소속되어 그 인적·물적·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학술연구단체인바, 인사모의 활동 내용에 비추어 연구회 활동의 일환인 소모임 활동으로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임



- 표현의 자유라든가 난민법 등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성격상 수궁할 수 있는 논제이나, 사법제도를 논의하겠다는 그 취지에 비추어 인사모는 연구회 활동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판단됨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는 연구회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8조(활동) ①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2.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
3.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해당 분야에 관한 법률심포지엄의 개최

- 연구회 회칙은 연구회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8조 (활동)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2.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
3.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법률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개최
5.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국제 교류
6.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 인사모는 상고법원, 재판장과 배석의 관계,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국제인권법 분야가 아닌 주제를 논의하고 있음 ⇒ 회칙 제8조 제6호의 ‘그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대법원과 다른 의견의 외부 표출 우려

- 통상 소모임 개최 후 그 결과를 연구회 커뮤니티 내에 게시해 왔음
- 인사모는 상고법원 관련 논의 내용을 커뮤니티 내 게시판에 올릴 예정인바, 찬반양론의 각 논거를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고법원에 대한 찬반거수 결과까지 게시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 외부에서 볼 때 국제인권법 연구회 전체의 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비록 사전에 연구회 회장 및 대법원과의 상의를 거치겠다고 약속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회원(예컨대 이○○ 부장판사)이 사전 논의 없이 외부 언론에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제공하면서 연구회의 이름을 차용하는 독단적 행동을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다. 검토

▣ 외부로의 의견 표명 문제 ⇒ 현재까지는 통제 가능

- 현재 연구회는 물론 인사모를 포함한 소모임 활동은 90% 이상 파악되고 있음
- 주요 회원들도 문제될 소지가 있는 모임이나 활동은 자제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대부분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로의 의견 표출은 반드시 사전에 회장 및 대법원과의 논의를 거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다만, 2015. 8. 11.자 모임 후 2015. 8. 19. 현재 게시판에의 게시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바,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논의 결과가 왜곡 전달되거나 다른 대다수 회원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 게시를 막기는 어려우므로, 내용의 순화를 권유하여 게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7조, 폐쇄커뮤니티의 개설에 의한 논의까지만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인사모의 경우에 갑자기 폐쇄커뮤니티를 개설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임

제7조(분과 및 폐쇄 커뮤니티)

- ① 연구회는 세부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고, 회장은 각 분과마다 분과별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 ②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폐쇄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회는 간사 또는 분과별 간사의 허가를 받은 회원에 한하여 폐쇄 커뮤니티에 자료를 게시하거나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8) 게시판에 올릴 내용은 별첨 5의 '새로운 소모임의 구성 알림 및 경과 보고' 문건 참조



▣ 향후 문제점

- 앞으로 연구회 및 소모임 활동은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한 성격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60%가 넘는다고 판단됨
- 물론 現 회장의 임기 1년이 만료된 후 2016년 차기 회장으로 선출 가능한 고등부장들(김○○, 김○○ 등) 역시 연구회 및 소모임 활동에 대하여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17년 이후 이○○ 부장 등 주요 회원들이 회장으로 선출되어 대법원과의 의견 교환 없이 독자적 활동을 하게 되고, 대다수 회원들이 별다른 의식 없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법원 내 이질적 집단으로서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4. 대책

가. 연구회 자체 대책

▣ 회장의 역할

- 연구회가 국제인권법 분야에 국한된 연구를 하는 경우 이는 격려하고 권장하여야 할 활동임
- 따라서 국제인권법 분야를 벗어난 인사모 소모임을 제외한 연구회의 다른 활동은 문제가 없음 ⇒ 아직 정식 모임을 가지 않은 인사모에 대하여는 향후 정식 활동 추이를 관망하면서 향후 몇 개월 간 통제를 하되 외부로의 의견 표출 등 움직임이 나타나면 강하게 제어를 하고, 연구회 전체에 대하여는 '연구회 활동'에 관한 회칙 규정을 근거로 국제인권법 분야가 아닌 논제에 관하여는 강하게 제어를 하여 연구회 내에서는 논의를 계속하지 못하게 제재
- 회장의 제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커뮤니티 내에서 그 문제를 공론화하여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을 것임
 - 대다수 회원들은 연구회의 원래 목적에 충실한 논제의 선택에 동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주제에 관하여는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임



- 만약 주요 회원들이 대다수 회원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계속 논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요 회원들은 대다수 회원들로부터 고립될 것임
- 다만, 대다수 회원들이 연구회의 본래 활동 목적을 벗어난 논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문제를 공론화한 회장의 권위가 손상되어 사퇴 수순을 밟게 되겠지만, 이는 연구회를 제도권 내에 둘 수 없다는 비판의 전제가 되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내 커뮤니티로서의 존립 근거를 상실할 것임

■ 고등부장들의 역할

- 김○○, 김○○, 성○○ 등 고등부장들은 회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소모임이나 지방 모임, 뒷풀이 모임 등에 대신 참석하여 회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고 있는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함
- 고등부장들로 하여금 건전한 소모임 창설 및 적극적 활동을 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연구회 내 진보적 분위기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음

나. 대법원의 대책

■ 제1안

- 강경 案 : 대법원이, 인사모의 논제 선택 및 활동 내용의 문제점을 내세워 공식적으로 연구회의 성격 및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에만 충실할 것을 연구회에 정식으로 요구하는 案
- 방식 : 연구회 회장과 간사에게 대법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회장이 이를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
- 장점 : 연구회의 향후 노선을 명확히 하여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단점 : 연구회의 일부 활동에 문제적 내용이 있다는 점과 무관하게, 주요 회원들과 젊은 법관들은 대법원이 커뮤니티 활동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집단 반발할 우려가 큼. 이 점이 현재 추진 중인 상고법원 반대론과 함께 이슈화 된다면 법원 안팎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많음

■ 제2안



- 절충 案 : 대법원이 연구회에 대하여 인사모의 성격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커뮤니티 밖에서 논의하는 것은 몰라도 커뮤니티 내에서 논의하는 것은 不可하다는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
 - 우리법연구회가 2015. 5. 정기세미나에서 상고법원 관련 토론을 하였으나, 제도권 바깥의 모임인지라 세간의 이목을 끌지 못한 선례가 있음
- 방식 : 대법원이 연구회 회장과 간사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회장이 이를 연구회 내 운영위원회 및 인사모 대표와 총무들에게 알려 연구회 밖에서 논의할 것을 설득
- 장점 : 문제 있는 소모임인 인사모 부분에만 제재를 가하여 대다수 회원들의 반발이 거의 없을 것임
- 단점 : 인사모를 중심으로 한 주요 회원들의 반발과 향후 활동의 음성화로 통제 및 관찰 범위를 벗어나게 됨

■ 제3안

- 유화 案 : 상고법원이라는 최대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연구회 및 인사모 소모임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외부로의 의견 표출이나 과격한 활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이를 통제하고, 상고법원 현안이 마무리된 이후에 정식으로 문제를 해결
- 장점 : 연구회의 반발이나 이의 제기가 없을 것이므로, 상고법원이라는 법원 최대의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문제 돌출을 피할 수 있음
- 단점 : 추이를 관망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 통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화약고를 지키는 셈이 될 수 있음

■ 結 (기타 의견)

[끝]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 (對外秘)

2015. 8. 24.

기획조정실

1.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개설 및 활동 경과

▣ 개설 및 예비모임의 경과

- 2015. 7. 7. 박○○ 판사, 개설 제안 ⇨ 7. 21. 첫 예비모임(법관사회 내부 소통 및 사무분담 등 논의) ⇨ 8. 11. 두 번째 예비모임(상고법원 끝장 토론회) ⇨ 분과위원장 김○○, 총무 박○○, 박○○ 판사 확정

▣ 향후 활동 일정 및 예상

- 9. 14. ‘합의부의 운용’(재판장과 배석의 관계)을 주제로 정식 첫 모임 예정
- 차후 예상 논의 주제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 법관 관료화 등

2. 문제점

▣ ①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에 명백히 위배됨

- 법원행정처의 예산 및 전산자원을 지원받는 연구회의 소모임으로서, 그 **준** **립근거인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에 반하는 활동임**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행정예규’

▶제1조, 예규는 전문법률분야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규에서 정하는 제반 요건을 갖추었을 때 행정처장에게 설립허가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처장은 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8조, 연구회의 활동은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 ‘해당 분야에 관한 법률심포지엄의 개최’ 등으로 한다.

▶제9조, 행정처장은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의 평가자료를 참작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법원 네트워크 등 전산자원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칙’**

▶ **제8조(활동)**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2.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
3.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법률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개최
5.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국제 교류
6.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 소모임의 논의 주제들은 ‘국제인권법’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연구 등과 아무런 관련 없음 ⇨ 사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연구회의 이름을 빌린 연구회 내 소모임의 형태로 활동하는 것은 예규 및 회칙에 반함

■ **②주요 구성원의 성향 등에 비추어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법원 내외부에 표출할 가능성 높음**

- 인적 구성 및 정치적 성향 측면에서 우리법연구회와 유사함
- 후견 역할을 하면서 연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재조·재야 선배들의 성향상 대법원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표명의 자제를 적극 권유할 가능성도 낮음
- 국제인권법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언론 보도 가능성 높고, 연구회 회장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큼
- 개인 의견이 아닌 법관 연구회의 자체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성 큼

■ **외부로 의견을 표출하지 않더라도, 소장 판사들에게 대법원의 정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우려 큼**

- 국제인권법연구회원의 강한 유대관계, 학술모임보다 사적인 인적 결합체로서의 분위기, 400명이 넘는 회원 수, 젊은 판사들의 연구회에 대한 애정 및 자부심과 적극 참여 분위기 ⇨ 소모임 활동으로 상당한 부정적 파급효과



우려

- 사망한 이○○ 판사와 폐암 투병 중인 박○○ 판사 모두 공교롭게 연구회 소속임 ⇨ 법관 업무과중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심정적 결속력 강화

3. 대응 방안 검토

▣ ①사전적 대응 vs. 추이 관망 후 의견표명시 대응 ⇨ 사전적 대응 필요

- 인사모는 상고법원 등의 주요사법 현안에 대해 대법원과 상반되는 입장을 외부로 표명할 위험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에서 본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사전 대응시는 소모임의 논의주제 자체가 부적절하고 예규에도 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법제도에 대한 논의자체의 중단 적극 요구할 수 있으나, 관망 후 대응시는 '의견표명을 자제해달라'는 부탁 내지 권유에 그쳐 실효성이 적을 가능성 큼
- 의견표명 시기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인사모에서 의견을 정식으로 표명하기 전이라도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통해 언론보도가 될 가능성 있음

▣ ②우선 공론화하지 아니한 채 인사모 주도세력 상대 원만한 설득 시도

- 연구회장 또는 연구회 선배(이○○ 등)이 소모임 주도세력(제안자 박○○ 판사, 이○○ 부장판사 등)과 접촉하여 연구회 내 정식 소모임으로 부적절함을 설명 ⇨ 자발적 소모임 활동중단 또는 논의 주제를 국제인권법분야와 관련된 사항으로 변경 유도
- 해당 법관들이 압박 또는 탄압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
- 성공가능성 低 ⇨ 불응할 경우의 대응전략 수립 필요

▣ ③인사모 적정성 여부 공론화는 행정처가 아닌 연구회장이 주도할 필요

- 행정처가 주도하여 논의 주제 적정성 문제 제기할 경우 그 당부와 무관하게 '행정처가 연구회 활동에 개입한다'는 반발 가능성 (인사모에서 상고법원을 논의한 직후이므로 반발 시 위험성 더욱 큼)



- 연구회장이 연구회 내부에 '소모임의 주제가 연구회의 연구분야를 넘어선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
 - ① 다수 회원이 인사모의 부적절함에 동의할 경우 소모임 활동 중단 유도
 - ② 부적절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연구회 여론이 모아질 분위기인 경우 연구회장은 (아래 ④항에서 볼) '공식기구인 평가위원회에 소모임 활동의 예규 및 회칙 각 제8조 위반 여부 등 적정성 판단을 의뢰하자' 고 제안하여 국면전환할 수 있음
 - 규정을 존중하는 법관들의 성향상 ①항 가능성이 더 큼 ⇨ 연구회의 자율적 자정작용으로서 바람직한 해결책이 됨
- 소모임 법관들이 다수 회원의 반대에도 연구회 내 정식 소모임의 지위를 계속 주장할 가능성은 희박함

■ ④규정상 연구회 평가기구인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 활용 가능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행정예규'

▶ 제9조 제1항

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를 둔다.

▶ 제9조 제4항

평가위원회는 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 “운영현황 점검 등”의 권한에 논의주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임
- 관련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의 의견 개진이므로, 연구회원인 법관들 입장에서 행정처 기조실장 또는 차장 등 특정 직위의 의견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비하여 (행정처가 연구회 활동에 개입한다는) 심정적 거부감이 덜 할 것임

■ ⑤활동 중단 유도 과정에서 해당 법관들 절차적으로 배려할 필요

- 공론화 이전에는 연구회장, 공론화 이후에는 평가위원회가 각 인사모 핵심 관계자와 식사 등의 사전 면담을 통해 인사모측의 진의를 확인하고, 규정상 부득이함을 안내 ⇨ 자신들이 사법행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제당했다



고 느끼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⑥자발적 활동 중단 불응시 제재 방안 및 반발 무마 방안

- 행정처는 예산 및 전산자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연구회 전체 활동에 대하여 중단하기 보다는 인사모 활동 부분에 대하여만 중단함으로써 일반 회원과 분리 전략 필요(인사모 게시글에 대하여만 열람불가 조치 등)
- 인사모에서 연구회 명칭을 계속 무단사용하는 경우에는 예규 및 법관윤리 강령 등 위반으로 징계 가능 ⇨ 단 실제 징계에는 신중할 필요
- 연구회 일반 회원에 대하여는 지원책 제공할 필요
 - 인권 관련 각종 국제기구 출장기회 제공, 연구용역 기회 제공, 연구결과 책자 발간 등에 특별예산지원 등을 통해 연구회 일반 회원과 분리
 - 인사모 입장에서 위와 같은 혜택 때문에 소모임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없지만, 적어도 활동 중단의 명분이 될 수는 있음

■ ⑦활동 음성화 관련 대응방안

- 인사모 주도 법관들의 성향에 비추어 인사모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보다는 연구회 밖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법연구회의 2015. 5. 상고법원에 관한 세미나 사례에서 보듯, 세간의 이목을 끌기 어렵고, 법원행정처의 부담이 적음
- 단 사법행정 현안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려는 욕구는 항상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있음
 - ①현재 개별 추천 및 의사타진 방식으로 인적 구성이 되고 있는 법원문화연구반의 문호를 공개적으로 개방한 후 각급 법원 법관과 행정처 심의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원문화개선TF로 확대개편 ⇨ 인사모 안전인 ‘합의부 운용 방안’ 등도 법원문화개선TF의 주요 논의주제가 될 것이므로, 인사모 주요 인사들 TF 참여 유도 + 인사제도 등 일선 법관 주요 관심 현안 논의의 장에 일선 법관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고, 공식 의견 개진 기회 제공할 필요



-
- ②상고법원 관련 비공식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고, 간담회에 인사모 멤버들 참여 적극 권유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관련 (3)

2015. 9. 15.

국제인권법연구회

1. 기존 진행 경과

■ 2015. 7. 7. 소모임 제안

- ○○지법 박○○ 판사(○○기)가 소모임(분과위원회) 형태로 제안

■ 2015. 7. 21.자 첫 예비모임

- 참석자 12인 ⇒ 임원 선출 : 분과위원장(대표) 김○○, 총무 박○○, 김○○ / 참석자 중 최연장자는 ○○지원 ○○기 이○○ 부장판사
- 논의 주제 : 향후 논의 대상 주제의 선정

■ 2015. 8. 11.자 두 번째 예비모임

- 참석자 16인 ⇒ ① 소모임 명칭을 ‘사법제도 소모임’에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약칭 “인사모”)으로 변경 ② 제2총무 박○○ 판사 외에, 제1총무 김○○ 부장판사가 빠지는 대신 박○○ 판사가 제1총무를 맡기로 함
- 논의 주제 : 상고법원
- 기초발표 : 이○○ 부장판사(찬성론), 이○○ 부장판사(반대론)
- 외부로의 의견 표출 : 커뮤니티 내에 논의된 내용을 올리기로 함 ⇒ 2015. 8. 19. 박○○ 판사가 커뮤니티에 경과보고 공지
 - 상고법원 찬반 각 논거를 실시한 후, 「토론을 마친 뒤 참가자들의 투표 결과 다수가 ‘현행 상고제도를 유지하면서 심리불속행제도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자’ 는 측면에서 현재의 상고법원 논의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라고 실시
 - 「향후 1년 기간에 해당하는 주제의 발굴과 연구 담당자 선정을 통하여 외부 발표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발표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그 목표를 정하였다.」 고 향후 계획을 실시



2. 2015. 9. 14.자 정식 첫 모임

▣ 첫 모임에 앞선 연구회장 접촉

- 2015. 9. 9. 회장 주재 인사모 저녁식사 ⇒ 김○○(대표), 박○○(대표), 이○○(최연장자), 이○○
- 회장 발언 요지 : 인사모의 커뮤니티 외 활동 권유, 모임 결과 공지의 문제점 지적
 - 人事 등 사법제도 논의가 연구회 소모임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 인사모 결과 내용, 특히 민감한 내용의 커뮤니티 내 게시가 적절한지 여부 (소극)
 - 법관으로서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만들어 제도 개선을 꾀하자는 취지의 소모임인 ‘인사모’의 운영 개선 필요성 : 사법행정 책임자들의 제도 개선 및 소통의 노력
 -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체를 생각하여야 할 필요성의 강조 : 커뮤니티 지원의 증대, 국제인권 관련 해외 기관에의 파견, 국제인권 관련 회의 출장, 커뮤니티 내 인권자료실의 코트넷 상설화 등 연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
- 반응
 - 회장 발언 취지에는 공감하고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고 함
 - 일단 공지 문제는 dry하게 간단히 결과만 공지하는 것으로 하고, 공지문 작성도 박○○ 판사가 아닌 모임 참석 젊은 법관들이 논의해서 작성하기로 하였다 고 함
- 향후 반응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봄

▣ 첫 모임의 내용

- 참석자
 - 기존 예비모임 참석자들 대부분을 포함하여 20여 명 참석



- 그 중 지방법원 배석판사 4인, 고등법원 배석판사 1인 포함됨

● 논의 주제 : 바람직한 합의부의 조직과 운용

- ‘업무적 측면’ 및 ‘생활적 측면’ 으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업무적 측면’ 논의가 11시까지 이어져 ‘생활적 측면’ 은 차회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고 함

● 기초발표 : 배석판사 2인 = 문○○(중앙, 37기), 홍○○(안양, 38기) / 부장판사 2인 = 이○○(수원, 27기), 정○○(연수원, 27기)

● 배석판사들 의견

- 고법의 대등재판부 판사와 비슷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고 함

- 예컨대, 사건 합의에서 주심 배석판사의 의견 존중, 실질적 3인 합의 및 주심 배석판사와의 사이에 상당 수준의 대등 합의의 필요성,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는 부장판사 업무 태도의 시정 필요성, 배석판사를 재판연구원처럼 대하는 부장판사 태도의 시정 필요성 등

● 부장판사들 의견 : ‘실질적 3인 합의’ 내지 ‘주심 배석판사와의 대등 합의’ 의 현실적 어려움 등 부장판사들의 입장을 설명하였다고 함

● 뒷풀이 : 새벽 2시 넘어 마쳤고, 김○○ 고등부장, 이○○ 부장판사, 이○○ 판사 등이 뒤늦게 합류하였다고 함

■ 제2회 모임 예정

● 일시 : 2015. 10. 19.

● 논의 주제 : 원래는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이었으나, 첫 모임에서 「합의부의 생활적 측면」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2회 모임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음

[끝]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6. 4.

법원 행정처

〈 요약 〉

1. 검토 배경

가. 전문분야연구회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 **2000년 이후 15년 이상 근본적 변화 없이 유지** ⇨ 연구분야 주제는 물론 연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점 필요**

나. 특정 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및 활동 현황**

- 회원 431명으로 중복가입 허용되는 연구회를 제외한 **전체 11개 연구회 중 3번째 규모** ⇨ 곧 **도산법연구회를 추월 2위** 등극 有力
- 2011. 8. 설립 이래 **가장 압도적인 회원 증가세**



- 2016년 들어 2개월 여 만에 40개가 넘는 본글과 수백개의 댓글 달림 ⇨ **다른 연구회의 전반적 침체 추세와 대비(최대 규모 민사집행법도 토론장 및 QnA 게시글이 1년간 7건 정도인 것과 대비)**
- **젊은 법관들의 가입 및 활동 활발** ⇨ 사무분담과 무관한 가입이라는 점에서 젊은 법관들 참여도가 높고, 다른 연구회의 노령화와 대비
- **외형적 급속·과잉 성장과정에서 드러난 전문분야연구회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필요** ⇨ **주제의 보편성으로 인한 이슈 선점 등 포함**
- **연구회 주도 세력의 편향성 및 영향력 증대로 인한 대책 마련 필요**



- 우리법연구회의 사실상 後身, 전문분야연구회 본질을 벗어난 활동

다. **종합대책 마련 필요** ⇨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과잉 성장 관련 위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및 정무적 대책 필요**

2. 연혁 및 현황 분석

- 연구회 및 관련 규정 연혁 개관 ⇨ 2006년 예규개정 이후 사실상 방치

- 예산 현황 ⇨ 최근 7년 이상 1억원 수준 동결

-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수 추이 및 예산 지원 현황

- 최근 수년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가파른 성장, 두 번째는 젠더법연구회 (2015년에는 노동법연구회도 회원 수 급증)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급증 원인 분석

- ① 전문분야 주제의 보편·포괄성 및 상징성 ⇨ 난민 등 국제적 이슈가 아니라 일반적 인권 관련 전반을 취급 ⇨ '인권'의 흡입력 극대화
- ② 핵심그룹의 적극적 확장 활동 ⇨ 창립 멤버(우리법연구회 출신 다수, 정황상 설립 배경 의문)들이 여전히 활동 주도
- ③ 회장 경선 등 자유롭고 개성있는 문화 ⇨ 고등부장과 평판사가 치열하게 경선을 치르는 등 구성원들의 애착과 자부심 + 연구와 무관한 공연관람 및 친목활동으로 연구회라기보다 법관 교류 모임 성격
- ④ 사조직적 특성 유지 ⇨ 선배의 찬조금 출연 당연시되는 등 인적 결합체로서의 분위기(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핵심그룹의 문화 반영)
- ⑤ 기타 ⇨ 지역별 친목모임, 운영위원 및 팀장제 등은 우리법연구회의 시스템이 그대로 이식된 것임

3. 현행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가. 전문분야연구회 시스템 전반의 주요 한계



■ ① 일부 연구분야 주제에 대한 법관 사회의 관심 消盡

- 의료법·언론법·기업법 등 회원수 감소 내지 정체, 참여도 저조

■ ② 중복가입 금지규정 形骸化

- 공정한 예산지원 등 필요성에 따라 규정된 원칙임. 하지만 사실상 커뮤니티 시삽 등에 의해 제한 없이 중복가입 허용되고 있음
-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중복가입 회원수도 단연 가장 많고(227명), 중복가입자 비율도 가장 높음(53%) ⇨ 핵심그룹의 적극적 포섭활동

■ ③ 한정된 예산 대비 연구회 다수로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 예산 및 전산망 지원에 상응하는 행정처의 실질적 관리방안 모색 필요

■ ④ 커뮤니티 폐쇄성 등으로 연구성과 사법부 내부 공유 미흡

- 재판실무 활용 등에 대한 기여도 높지 않고, 사법부 전체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 미흡

■ ⑤ 학계·재야·언론 등 상대 연구성과 활용 및 법원 신뢰강화 기능 미미

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관련 문제점

- ① 허가 전문분야 이탈·무시 ⇨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 논의영역도 이탈, 정치적 숨意 포함 주제 및 연사 다수

- ② 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에 조직적 개입 시도 ⇨ 핵심세력이 2015. 7. 발족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통하여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쟁점들에 조직적 관여

- ③ 일부 강경·핵심세력이 연구회, 나아가 사법부 전체 여론 주도

4. 대응방안

가. 개선방안 요약 ⇨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 및 인권법연구회 인기요인별로 그에 상응하는 개선·대응책 마련



나.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중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방안

■ (법관 사회 관심 消盡 ⇨) ①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 [필요성]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이슈독점 방지, 자기개발 욕구 충족 및 합리적 여론형성의 장 마련

- 일부 특정 집단이 논의를 주도하는 인사모와 ‘이사야’ (인사제도 및 법원문화 관련 여론 주도)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기 전에 합리적 여론 분출의 장 마련 필요

- [기본방향] 젊은 법관들의 관심·수요·참여 고려, ‘주제’ 못지않게 ‘주체’의 상징성 중요 ⇨ 젊은 법관들의 role model 前進 배치

● [후보 1] 사법국제화 연구회

- ① 외국어·해외사법·국외연수에 관심 있는 법관 다수, ② ‘국제’ 관련 이슈 포괄적으로 망라·포섭·유인 가능, ③ 우호적 분위기 형성시 각종 사법행정현안에 대하여 관련 자료 수집 및 지지 여론 출발점 역할 기대

- [운영진 후보군] ① 이○○ 고법판사, ② 원○○ 지법부장 등

● [후보 2] 가칭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 연구회

- 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속 사법부 및 법관의 모습 관련 쟁점 전반

- ① 젊은 법관의 관심, ② 미디어 속 왜곡된 법관과 사법의 모습 바로잡는다는 명분이 공감대 형성, ③ 영화 및 방송 관련 이벤트로 관심 흡인력 극대화하여 단기간에 연구회 판도에 변화 유도 가능 등

- 세련된 명분 제시 중요

- [운영진 후보군] ① 문○○ 지법부장, ② 전○○ 고법판사 등

■ (중복가입 금지규정 形骸化 ⇨) ② 중복가입자 정리

- [필요성] 원칙을 준수하는 법관만 여러 손해를 보고 있고, 편법적 중복가입의 혜택을 인권법연구회가 최대 향유하고 있음



- ① 법관들 상대 중복가입자 정리 명분 있고, ②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하며, ③ 인사모 해소를 위한 유효한 우회적 압박 카드이며, ④ 사전 준비의 부담 無 등의 여러 장점 있음
- 施行時 국제인권법(431⇨204), 노동법(295⇨196) 등이 가장 위축됨
- 중복가입자 정리과정에서 국제인권법으로 편중되는 부작용 방지 위해 고법부장급 탈퇴 등 다른 방안과 동시에 실시 필요
-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 ③ **예산 증액 및 실질 평가 시스템 구축**
 - 예산동결 기간의 회원 및 성과 급증, 다른 부처 현황 등을 내세워 예산 당국 설득 ⇨ 증액에 따른 행정처의 예산분배 재량 확대로 연구 성과에 따른 실질적 차등지원 가능
 - 평가기준 구체화·실질화하고 각급법원 전문분야 지원비(6억원)도 활용
- (커뮤니티 폐쇄성 ⇨) ④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 ‘자신들만의 同質感’, ‘이너써클 활동의 은밀한 滿足感’ 등 유발 ⇨ 학술성과 공유, 사법부 전체 역량 축적에 기여 필요
 - [시행방안] ① 다른 전문분야 성과 접근성 강화, ②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물 사법부 전체 공유 등의 명분과 ③ 각종 성과물 지식광장 게재 독려 등 오해 해소 방안 동시 활용
 - [기대효과] ① 사법부 전문역량 강화 및 지식공유 활성화, ② 중복가입금지 엄격 시행에 따른 불만 해소, ③ 은밀한 논의의 만족감 내지 결속감 약화로 인적 유대 수단이 아닌 학술연구 수단으로 정립, ④ 인사모의 자유게시판化로 chilling effect 등 다양한 기대효과
- (외부 활동 미흡 ⇨) ⑤ **외부 교류 및 우군 확보 적극 지원**
 - [시행방안 ①] 대형 이벤트 및 출판사업 발굴 및 지원
 - [시행방안 ②] 매년 정기 평가시 외부 활동 관련 항목 대폭 강화



- [시행방안 ③] 사법부 우호 인사 확보를 위한 방안 등

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과잉 확장 관련 대응방안

■ (주제의 보편타당성 ⇨) ① 허가받은 전문분야 범위로 제한

- 허가받은 '국제인권'으로 범위한정 ⇨ 단 학문의 자유 억압 등 오해 방지
- [해결방안 ①] 회장의 리더십 발휘
 - 전문분야연구회의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인사모 등에 대한 문제제기
 - 차기 회장은 핵심세력이 전면 나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회장 체제에서 인사모 해결필요

● [해결방안 ②] 대안적 연구회 신설 또는 대안적 활동 지원

- 보편적 인권 관심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독점적 유입 방지 및 수요 흡수
- 헌법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보편적 인권 관련 대형 이벤트 발굴·지원

■ (핵심그룹의 확장 시도, 자유로운 문화 및 사조직적 특성 등 ⇨) ② 핵심세력과 다수 회원간 분리 방안

- 인위적 개입은 성공 불가능함⇨자연스러운 문제제기 및 공론화 유도
 - ① 인사모 문제, ② 내부 신망 높은 고법부장들 집단 탈퇴(명분 및 시기 조율), ③ 우리법연구회 관련성 등 막연한 논란 및 문제제기만으로도 상당수 법관의 외면을 받게 될 가능성 있음

■ (지역별 모임 등 친목모임 활성화 ⇨) ③ 장점을 다른 연구회에 도입

■ (설립 목적 위배 활동 ⇨) ④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방안 : 소극

- 명분 약하고, 득보다 실이 많음

■ (행정처의 관리 강화 ⇨) ⑤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방안 : 소극



- 자율적 연구활동에 대한 탄압 논란, 행정처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부담 등이 큼

■ **인사모 관련 로드맵 예시 (사법행정위 개회 시기 중 시행 여부 문제됨)**

4월 하순	<p>◆ 전정국장 명의 공지</p> <p>'① 특별히 중요하고 가치있는 활동에 대하여 특별예산 지원 방안 도입 ②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 예정 (일반 법관들 피해 명분) ③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로 전환 (사법부 전체 역량 강화 등)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규정 설명하면서 연구회 목적과 무관한 소모임 해소 당부'</p>
5월 초순	◆ 국제인권법 회장, 회원들 상대 인사모 관련 문제제기
5월 중순	<p>◆ 사법국제화연구회 및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연구회 신설</p> <p>◆ 다른 연구회 활동 활성화 (밴드 및 지역별 모임 등)</p>
5월 하순	◆ 인사모 소모임이 존치 입장을 고수할 경우 ⇨ 고법부장 등 대거 탈퇴
6월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 다수 회원의 의견을 모아 인사모의 자연스러운 소멸 유도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 검토

2018. 6. 5.

법원행정처

1. 검토 배경

가. 전문분야연구회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 ▣ 2000년 관련 예규 제정 후 15년 이상 근본적 변화 없이 유지 ⇨ 연구분야 주제는 물론 연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필요

나. 특정 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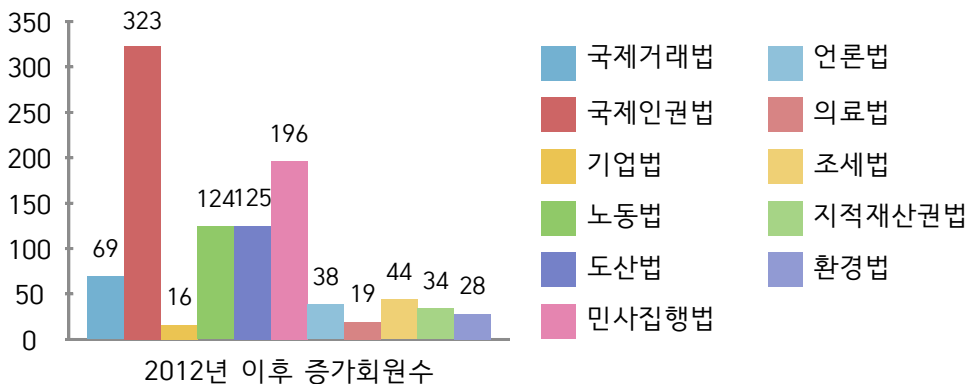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및 활동 현황

- 2016. 3. 기준 431명으로 (중복가입 허용되는 연구회를 제외한) **전체 11개 연구회 중 3번째로 큰 규모** ⇨ 곧 도산법을 제치고 2위 등극 유력

연구회	민사집행법	도산법	국제인권법	중복가입 연구회 중에서는
회원수	875명 (법관은 635명)	449명	431명	형사법(2,041명), 젠더법(691명)이 대규모임

- 2011. 8. 설립 이래 가장 현저한 회원 증가

2012년 이후 증가 회원수





- 2016. 1. 1.이후 현재까지 2개월 여만에 커뮤니티에 40여개의 본글과 수백개의 댓글 달림 ⇨ 다른 커뮤니티의 전반적 침체 추세와 대비됨
- 최대규모 전문분야연구회인 민사집행법 연구회의 커뮤니티 활동 감소 추세

년도	토론장 게시글 수	QnA 게시글 수
2010년	17개	46개
2015년	1개	6개

- 법관 전세대에 걸쳐 고른 가입 및 활동 활발

기간	연간 가입법관	20기 이상	21~25기	26~30기	31~35기	36~40기	41기 이하
2014년	82명	5	3	16	30	22	6
2015년	132명	1	12	15	27	60	17

- 가입회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정 기수 구간에 치우치지 않고 법관 전세대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음
- 다른 전문분야연구회도 배석판사급 경력인 법관들의 가입이 다수이나, 이는 사무분담으로 해당 분야를 맡게 됨에 따라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인권법연구회는 재판사무분담과 무관하게 개인적 관심으로 인하여 가입
⇨ 젊은 법관들의 관심이 다른 연구회에 비하여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 cf) 민사집행법 연구회 오프라인 활동(원외연수) 참여 법관의 노쇠화

년도	참여 법관 수	지법부장 이상 법관 수	법관경력 하위 10명의 평균 법관경력
2010년	55명	13명 (23.6%)	1.6년
2015년	48명	17명 (35.4%)	3.3년

▣ 외형적 급속·과잉 성장과정에서 드러난 전문분야연구회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필요

- ‘국제인권’ 주제의 보편성으로 인한 이슈 先占 및 확장, 편법적 중복 가입 방치 등 운영시스템 자체의 문제점 확인 및 보완책 마련 필요



▣ **나아가, 연구회 주도 세력의 편향성 및 영향력 증대로 인한 위험성 관련 대응책 마련 필요**

-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 핵심세력이 자신들의 법관사회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정황** 감지됨
- 전문분야연구회의 본질을 벗어난 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 방안 및 위험성 해소 방안 긴요한 시점임

다. 종합적 대책 검토 필요

- ▣ **특정 연구회가 특정 세력의 주도하에 과잉 성장하면서 전문분야연구의 취지에 반하는 활동을 함에 따른 다양한 위험 파생 ⇨ **위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및 政務的 대응방안** 종합 검토 필요**

2. 연혁 및 현황 분석

▣ **연구회 및 관련 규정의 주요 연혁 개관**

- 2000. 7. 「전문분야연구회의구성및지원에관한예규」(이하 예규) 제정
- 2000. 8. 행정처장이 지정한 국제거래법연구회 등 11개 연구회로 시작
- 2006. 2. 예규 개정으로 연구회 운영상 문제점 일부 개선
 - 연구회 설립을 ‘행정처장의 분야 지정’에서 ‘법관들의 자유선택’으로 전환, 단 난립 방지 위해 행정처장이 일정한 요건 하에 설립허가 등
- 2010. 12. 예규 개정 ⇨ 활동성과 및 결산현황 보고시기 조정
- 2011. 8. 국제인권법연구회 신설 ⇨ 현행 15개 연구회 체제 정립

▣ **예산 현황**

- 2016년 예산 편성 ⇨ [210-12 복리후생비] 전문분야 실무연구회 지원비 7억 1천만 원
 - 전문분야연구회 지원비로 1억 2백만 원 배정 (나머지 6억 8백만 원은 각급 법원 재판관련 전문분야 연구활동 지원비)



- 최근 7년 이상 연구회 지원비 1억 원 선에서 동결 (2012년 무렵까지는 위 지원비가 ‘전문분야 연구활동지원’ 약 6억 원과 ‘사이버연구회 활동지원’ 약 1억 원의 2가지 항목으로 편성되었던 영향도 있음)

▣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수 추이 및 예산 지원 현황

연구회	회장	시삽	회원 수						예산지원현황(평가순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년		2015년	
									순위	배정액	순위	배정액
국제거래법	노○○	홍○○	121	121	152	162	206	221	8	550만원	7	550만원
국제인권법	이○○	김○○	11. 8. 설립		108	217	285	431	4	700만원	4	700만원
기업법	김○○	김○○	180	199	198	197	207	214	15	450만원	13	450만원
노동법	김○○	김○○	155	165	171	179	200	295	8	550만원	10	550만원
도산법	이○○	이○○	264	288	324	364	402	449	5	650만원	7	650만원
민사집행법	김○○	이 ○	560	614	679	726	773	875	2	1천만원	1	1천만원
사법정보화	허○○	박○○	300	336	355	362	380	395	8	550만원	12	550만원
언론법	고○○	남○○	88	94	102	118	127	140	12	500만원	14	500만원
의료법	이○○	노○○	236	236	272	283	294	291	12	500만원	15	500만원
젠더법	민○○	김○○	389	397	433	628	651	691	3	950만원	1	950만원
조세법	김○○	이○○	176	186	213	222	238	257	5	650만원	6	650만원
지적재산권법	이○○	이○○	319	319	340	356	358	374	5	650만원	5	650만원
헌법	장○○	김○○	165	184	199	213	220	269	12	500만원	11	500만원
형사법	임○○	이○○	235	519	825	1,294	1,683	2,041	1	1250만원	3	1250만원
환경법	배○○	이○○	182	188	217	224	236	245	8	550만원	9	550만원
회원총수 및 총지원금			2,699	3,139	3,546	4,588	5,545	6,943		1억원		1억원

※ 노란색 음영은 중복 가입 가능 연구회

※ 민사집행법 연구회는 사법보좌관 등의 준회원 포함(법관은 635명)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급증 원인 분석

● ① 전문분야 주제의 보편·포괄성 및 상징성

- “국제인권” 이 갖는 보편타당성 등이 법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옴
- 특히 “국제인권법” 으로 한정하여 설립허가를 받았음에도 **일반적 인권 관련 주제 전반을 다루고 있음** ⇨ 난민 등의 국제적 주제에 한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인권” 의 흡입력 극대화**

☑ 주제가 갖는 흡입력이 회원 가입으로 이어진 사례

- ▶ 2015. 6. 사법연수원에서 ‘인권법과 법관’ 전문분야 연수 실시
- ▶ 법관 72명이 참가, 그 중 19명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아니었으나,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연수에 자발적 참가 ⇨ 3일간의 연수 종료 후 전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

● ② 핵심그룹의 적극적 확장 활동

- 2011. 8.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 당시 멤버 31명이 여전히 연구회 각종 활동을 주도하고 있음

☑ 국제인권법 설립 배경 관련 분석

- ▶ 2011. 8. 당시 노동법연구회가 이미 170명에 달하는 법관 회원을 두고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었음 ⇨ 그럼에도 핵심그룹이 위 **노동법연구회를 더 확장하는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국제인권법연구회 개설을 신청
- ▶ 이는 핵심그룹이, (학술연구의 호기심이나 필요성이 아니라) 경직된 주제를 다루게 되고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기 쉬운 **노동법 분야 연구회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보편성을 지닌 새로운 연구회 창설을 통해 **활동무대를 마련하려는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
- ▶ 실제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설립 초기부터 인권과 무관한 ‘사법부의 독립 및 법관론’ 등을 주된 논의 주제로 삼아왔음**(2014. 2. 법관론 소모임 개설 등)

● ③ 회장 경선 등 자유롭고 개성있는 문화

- 법관으로서 **연구 활동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다른 전문분야 연구회(친목활동은 학술행사 또는 원외연수의 기회에 함께 이루어지는 정도)와 달리 상시적으로 연구와 무관한 공연관람 및 친목활동이** 이루어지고 권장되고 있음 ⇨ **전문분야 연구회라기보다 법관 교류 모임 유사의 형태로 운영**



- 회장은 단수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로 선출되는 다른 연구회와 달리 정견 발표 및 득표활동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함

☑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자유 경쟁 선거 사례

- ▶ 2013년 하반기에 있었던 2014년 회장 선거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현 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가 선거에서 낙선함
- ▶ 2015년 회장 선거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와 31기 단독판사(현 재판연구관) 등이 서로 출마의 변을 한 후 경쟁 선거를 치름
- ▶ 법원 내 다른 조직에서 찾기 어려운 구성원의 강한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 ⇨ 연구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애착과 자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음

☑ 네이버 밴드의 활성화

- ▶ 인적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모임답게 다른 연구회와 달리 네이버 밴드를 두고 있고, 회원수도 221명에 달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어 실시간 번개모임 등에 활용되고 있음

☑ 위와 같은 여러 특징에 힘입어 2015. 11. 정기총회(1박 2일)에 47명(회원 수 2배 규모인 민사집행법연구회의 원외연수 참가자수와 비슷함)이 참가하는 등 공식 모임도 활성화

● ④ 자유로움 속 私조직적 특성 유지

- 연구회 임원진 및 부장판사들의 찬조금 출연, 그들 주도의 회식문화 등 선배로서의 역할 요구가 당연시 되는 분위기로서 인적 결합체로서의 분위기 상당함 ⇨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핵심그룹의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⑤ 기타

- 2015년 132명에 달하는 회원이 집중 가입 ⇨ 인권편람 번역본을 회원에게 무료배포한다는 사정이 큰 영향을 미침 (양형실장 분석)
- 연구회 소속 지역별, 법원별 (친목)모임 활성화 ⇨ 다른 연구회에는 없는 현상으로 연구회 소속 법관들 사이의 동질감 등을 드러내면서 결속을 강화하는 선순환 기능
- 위와 같은 지역별 모임 시스템, 사조직적 특성 및 회장-운영위원-팀장(기획팀장 등)-지역위 등으로 이루어진 운영진 구성체계 등을 비롯한 운영방식은 우리법연구회의 시스템을 그대로 移植한 것임



3. 현행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가. 전문분야연구회 시스템 전반의 주요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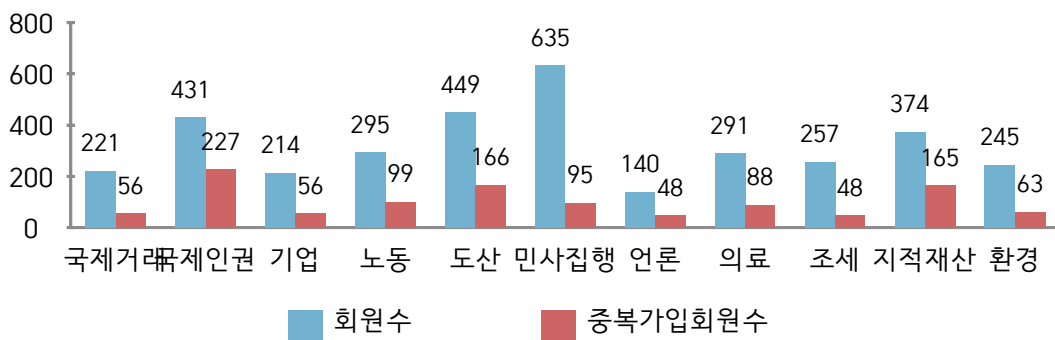
▣ ① 일부 연구분야 주제에 대한 법관 사회의 관심 消盡

- 의료법연구회, 언론법연구회, 기업법연구회 등 가입자 정체 내지 감소 및 활동 저조

▣ ② 중복가입 금지 규정 形骸化

- 중복가입금지 규정은 ① 회원수를 고려한 공정한 예산지원, ② 허수의 회원 증대 방지, ③ 법관별로 주된 하나의 전문분야를 집중 육성할 필요성 등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정책결정한 원칙임
- 사실상 연구회 중복가입을 막을 방법이 없고, 통제가능한 코트넷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시삽이 임의로 가입을 허가하면 중복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복 가입 현황

연구회별 중복가입회원 수



※ ① 중복가입이 허용된 연구회 제외(민사집행법은 사법보좌관 제외), ② 1명이 여러 곳에 가입된 경우 그 중 가장 먼저 가입한 학회 외에는 중복가입된 것으로 계산

-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중복가입 인원수도 가장 많고(227명), 중복가입자 비중도 가장 높음(53%) ⇨ 시삽 등 핵심세력에 의한 포섭활동으로 중복가입한 법관이 많은 것으로 해석됨



■ ③ **한정된 예산 대비 연구회 다수로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 ① 1억원의 적은 예산을 15개에 달하는 연구회에 분산 배분하고(최대 1천만원, 최소 450만원), ② 제한된 범위의 형식적 평가로 행정처의 관리범위 이탈 ⇨ 연구회 활동을 자극할 인센티브로서 기대효과 미약하고, 설립 취지에 맞는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 예산 및 전산망 지원에 상응하는 법원행정처의 실질적인 관리방안 모색 필요

■ ④ **커뮤니티의 폐쇄성 등으로 연구성과 사법부 내부 공유 미흡**

- 비회원은 대부분의 게시글에 접근 불가 ⇨ 연구성과 공유 차단
- 재판실무에의 활용을 위한 기여도 높지 않고, 사법부 전체의 전문성 향상에도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⑤ **학계, 재야 및 언론 등 상대 연구성과 활용을 통한 법원 신뢰 강화 기능 미미**

- ① 사법부의 전문성의 외부 각인, ② 법원의 우호세력 확보, ③ 전문분야 논의 주도 및 권위 있는 문헌 발행 등 어느 측면에서도 외부 상대 사법부 위상 강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흡함

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관련 문제점

■ ① **허가받은 전문분야 이탈·무시**

- 설립 당시 허가받은 연구분야

☑ 2011. 6. 제출한 설립허가 요청서상의 활동계획

- ▶ 북한인권문제의 대두와 탈북자의 증가,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재판증가, 인권문제의 재판쟁점화에 따라 이를 연구하는 전국적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필요함 ⇨ 명칭 그대로 “국제적” “인권” 이슈를 연구대상으로 함

☑ 2011. 8. 설립 및 회원가입 안내 공지문상의 활동계획

-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응답
- ▶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 성과의 정리 및 정보의 공유
-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심포지엄, 외부강연 등 학술모임의 개최



● 국제인권법연구회 2015년 정기세미나, 전문분야 연수 및 특강 개요

행사	주제	연사
1월 특강	경제민주화와 인권	정○○ 전 총리
3월 세미나	건강할 권리	김○○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5월 세미나	증세와 복지	새누리당 김○○ 의원
6월 법관연수	인권법과 법관	경향신문 이○○ 기자 등 (전○○ 대법관, 김○○ 헌법재판관)
7월 세미나	모욕죄의 남용과 한계	연구회 내 '표현의 자유' 소모임 소속 허○○, 류○○ 판사
8월 세미나	영화 빵과 장미	자유 토론
10월 특강	중동 내전과 난민 문제	경향신문 구○○ 기자
12월 학술대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한국노동법학회, 법원 노동법연구회와 공동개최

- '국제인권' 과 무관한 주제가 대부분 ⇨ 경제민주화와 인권, 증세와 복지 등은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의 논의 영역도 이탈하는 수준**임
- 정치적 함의를 포함한 주제를 자주 선정하다보니 **연사로도 전·현직 정치인들이나 정치색이 있는 기자 등이 다수 참여하게 됨**

■ ② '인사모'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전반에 조직적 개입 시도

- 연구회 핵심세력이 2015. 7.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발족하여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쟁점들에 대하여 인권을 핑계로 관여**

☑ 인사모 발족 경과

- ▶ 2015. 7. 7. 박○○ 판사(연수원 ○○기, **우리법연구회 간사 출신, 強性**)가 제안
- 2015. 7. 21. 첫 예비모임 ⇨ 대표(분과위원장) 김○○(연수원 ○○기, **우리법연구회 간사 출신, 強性**), 총무 박○○, 김○○(연수원 ○○기, 우리법연구회) 판사
- 2015. 8. 11. 두 번째 예비모임 ⇨ 김○○ 판사 대신 **박○○ 판사(연수원 ○○기, 우리법연구회, 박○○ 대법관 반대글 게시 활동 등)**가 총무 맡음, **상고법원 끝장 토론회**
- ▶ 제안 및 예비모임 당시부터 **법관사회 내부 소통, 사무분담, 상고법원 등을 내세움**
- ▶ 현재 인사모 카톡방에 **28명 가입, 활동 중**

☑ 2016. 4. 인사모 위원장 변경

- ▶ ○○지법 **이○○ 부장판사**로 위원장 변경
- 이○○ 부장 : 연수원 ○○기, 19○○년생으로 인사모 **최연장자, 우리법연구회 소속 아님**



▶ 변경의 배경 및 향후 활동 관련 입장

- 모임을 주도하던 박○○(2016. 2. ○○고등배석 발령), 박○○(2016. 3. ○○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 김○○(2016. 2. ○○지법 발령) 등이 활동에 시간적 제약받는 형편
- 최연장자로서 인사모 발족 당시부터 관여해온 이○○ 부장이 자연스레 위원장 맡게 됨
- 이○○ 부장은 인권법 회장인 양형실장에게 '행정처 등과 대립각을 세울 생각은 전혀없다', '본인이 나서지 않을 경우 **우리법연구회 멤버들이 인사모를 산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적절히 제지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면서 '일선의 의견을 전달하는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논의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 밝힘

● 인사모 활동 내역

일시	주제	참가 법관 등
2015. 9.	바람직한 합의부 조직과 운용(부장과 배석관계) ① 업무적 측면	20여명
2015. 10.	바람직한 합의부 조직과 운용(부장과 배석관계) ② 생활적 측면	15명
2015. 11.	사실심 충실화 1차 토론 (차○○ 판사가 독일 사례 등 발표)	지정토론 김○○, 이○○ 부장 등
2015. 12.	사실심 충실화 2차 토론 (시행된 각종 재판 모델 논의)	이○○, 박○○ 판사 발표 등
2016. 1.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방안 - 사법행정의 한계, 투명성 확보 방안, 사법행정위 선출 방식 등	
2016. 2.	사법행정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 고등법원장의 위원추천 등 비판	2016. 2. 송○○ 판사 등이 비판글 게시
2016. 4.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의 향방	10명 이하 참석(역대 최소)

- 상고법원, 사법행정위원회, 판사회의의 활성화 등에 관하여 조직적 개입 시도 ⇨ 향후 대법관 제청 등으로 주제 확대할 것임
- 구성원 중 1인이 코트넷에 게시글을 올리면 다른 회원들이 적극지지 댓글을 작성하는 등으로 코트넷 및 인터넷 공간 여론 주도

■ ③ 일부 강경·핵심세력에 의한 연구회 및 사법부 전체 여론 호도

- [커뮤니티 내] 우리법연구회의 내부결속 강화 시스템을 모방하여 일부 핵심 세력을 중심으로 유대관계 형성
- [사법부 내] 회원 급증, 젊은 법관들의 이목 집중을 통해 법관사회, 특히 소장법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위상과 이미지를 얻고 있음



4. 대응방안

☑ 개선방안 요약 ⇨ <전문분야연구회의 전반적 문제점>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기요인>별로 그에 상응하는 개선책 마련

- ▶ [전반적 문제점1] 법관 사회의 관심 소진 ⇨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 젊은 법관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중견 법관이 주도
- ▶ [문제점2] 중복 가입금지 규정 형해화 ⇨ 중복가입자 일제 정리(규범력 회복)
 - 국제인권법이 가장 큰 타격 + 주제 무관 소모임 정리 등 행정처 개입 명분 제공
- ▶ [문제점3] 형식적 평가 및 예산 배정 ⇨ 예산 증액 및 실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
- ▶ [문제점4] 커뮤니티 폐쇄성 ⇨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및 공유
 - 핵심세력 위축 및 인권법 회원들만의 이너써클 의식 희석 + 실무전문성 축적
- ▶ [문제점5] 외부 상대 성과 제시 미흡 ⇨ 외부 교류 및 우군 확보 적극 지원
 - 외부 교류를 예산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음
- ▶ [인권법 급증요인1] 주제의 보편타당성 ⇨ '국제인권으로 한정 + 대안적 연구회 신설'
 - 회장의 역할이 중요 + 인권 관련 수요를 대안적 연구회에서 흡수
- ▶ [인권법 급증요인2, 3] 핵심그룹의 적극적 확장 시도, 자유로운 문화 및 사조직적 특성
 - ⇨ 핵심세력과 다수 회원간 분리, 부장급 이상 대거 탈퇴로 시그널
 - 사실상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점 부각 + 다수 법관들의 경계심 활용
- ▶ [인권법 급증요인4] 지역별 등 친목모임 활성화 ⇨ 다른 연구회도 도입 및 활성화
 - 인권법연구회만의 특징 희석
- ▶ 기타 ⇨ 활동 저조 연구회 폐쇄 여부,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여부 등

가.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에 관한 개편방안 중 특정 연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

▣ ①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 필요성

- 인권의 보편성을 내세운 특정 연구회가 법관 사회의 이슈를 독점하는 현상 방지
- 시의성 있고 법관들이 관심있어 하는 주제에 대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법관들의 자기개발 욕구 해소는 물론 선후배 법관들의 바람직한 소통 창구 개설, 합리적 여론 형성의 장 마련



☑ 이슈별 법관여론 주도 온라인공간 분석

- ▶ ① 사법정책관련 이슈 ⇨ 국제인권법커뮤니티 중 인사모 소모임
 - ▶ ② 법관인사 및 법원문화(부장과의 관계 등) 관련 이슈 ⇨ 다음 익명카페 이사야
 - ▶ ③ 양성평등 관련 이슈 ⇨ 젠더법커뮤니티
 - ▶ ④ 모성보호 및 생활정보 관련 이슈 ⇨ 네이버 여성 법관 카페 유스티티아
- ⇨ 일부 특정 집단이 논의를 주도하는 '인사모'와 '이사야'의 영향력이 비대해지기 전에 법관들의 합리적 여론 분출의 장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커뮤니티 신설 필요

● 발굴의 기본방향

- 다수 법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발굴
- 전문분야의 '주제' 못지 않게 이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상징성 있는 선배법관 필요 ⇨ 젊은 법관들에게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법관들을 각 연구회에 분산 배치, 합리적 여론 형성의 구심점 역할 기대

● [새로운 연구회 후보 1] 사법국제화 연구회

- 각국 및 국제재판소의 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추후 연구회 인적 구성 및 활동상황 검토하여 '각국의 사법행정' 도 연구대상으로 확대
- 각종 사법현안에 대한 해외자료 수집, 번역 및 조사, 국내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번역, 해외 소개 및 홍보 ⇨ 현행 국제규범연구반을 확대개편하는 형태
- [참가 유인] 현재 국제규범연구반의 경우 장기해외연수를 준비하거나 외국어 실력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젊은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사법국제화연구회의 경우에도 설립 초기부터 행정처가 적극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젊은 법관 상당수의 관심을 끌 수 있음
- [+]
 - ① 외국어 및 해외사법에 관심 많은 젊은 법관들 상당수 참여 가능,
 - ② 국제인권법 회원 중 '국제' 관련 분야에 관심 있어 가입하였던 법관을 유인할 수 있음, ③ 포괄적인 이슈를 연구 주제로 망라 가능, ④ (인적 구성과 성향이 행정처에 우호적인 경우) 각종 사법행정현안에 대하여 관련 자료 수집 및 방어논리 개발, 지지여론 확산의 출발점 역할 기대 가능
- 운영진 후보군 ⇨ ① 이○○ 고법판사, ② 원○○ 지법부장



- [새로운 연구회 후보 2] 가칭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 연구회
 - [주된 분야] ‘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속 사법부 및 법관의 모습’ 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및 파생되는 법적 문제, 나아가 미디어가 법관 및 재판의 현실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관련 콘텐츠의 개발방안을 각 연구
 - **[+]** 젊은 법관들의 **관심을 쉽게 유도**할 수 있음(엔터테인먼트법 분야는 젊은 법관들이 관심을 갖는 전문분야 중 연구회 미개설된 몇 안 되는 분야 + 예산 지원을 통한 공연 관람, 예술인과의 간담회 등도 높은 호응 예상)
 - **[+]** 미디어 속 **왜곡된 법관과 사법의 모습을 바로잡는다는 필요성과 명분이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법정드라마 대본 집필 등에 관심 있는 법관들의 수가 상당함 ⇨ **자발적으로 적극적 활동 유도 가능**
 - **[+]** 주요 영화사·방송사·연예기획사 방문행사 등을 통해 법관 사회 화제의 중심에 서는 등으로 **단기간에 현행 연구회 판도에 가시적 변화** 유도 가능
 - **[+]** 장기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법원에 대한 정확하고 우호적인 정보와 인식이 제공되기 위해서는(ex: 영화 ‘12 angry men’) 위와 같은 모임 필요함
 - **[-]** 명분을 세련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풍 81’, ‘3S 정책’ 등과 같은 **愚民化 정책으로 비판**받으면서 행정처가 설립의 배후로 의심받을 위험 있음
 - 운영진 후보군 ⇨ ① 문○○, ② 전○○, ③ 오○○ 부장(고법판사)

■ 2 중복가입자 정리

- 필요성
 - ① 편법에 의한 연구회 중복가입이 난무하는 실정 ⇨ **원칙을 준수해 1개의 연구회에만 가입한 법관이 예산지원, 전문자료 접근, 전문성 있는 법관들과의 네트워크 기회 등 여러 측면에서 손해를 입게 되는 매우 부당한 결과 발생**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 ② 편법적 중복가입의 해택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가장 크게 누리고 있음 ⇨ **연구회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작업(중복가입자 정리)을 명분으로 실질적으로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장점

▶ **① [법관들 상대로 명분 있음]**

- 법관들의 학술조직인 전문분야연구회의 **활동 및 구성에 대하여 행정처가 관여할 경우 법관들의 자율성 침해, 학문의 자유 억압 등의 논란을 피할 수 없음**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경우 ① **중복가입금지규정의 규범력 회복**, ②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③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법관들의 피해 방지** 등의 명분 있음 ⇨ 규범 준수 및 편법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을 중시하는 법관들의 성향상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음

▶ **② [행정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임]**

- 수백명 가입법관의 연구회 활동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방안(활동계획 사전 승인, 사후 평가 강화, 특정 연구회에 대한 제재 등)의 경우 그 성격상 행정처장 또는 차장의 공지 내지 사전 안내가 필요할 수 있음**
- 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연구회 성과 평가 위원회(위원장 기조실장)'의 '심의 강화'를 개선수단으로 삼는 경우에도 유사한 논란의 소지 있음
- 중복가입금지 해소방안의 경우 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공지 및 시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나 저항 없음 ⇨ 그 시행방안에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에 대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다른 방안에 비하여 낮음**

▶ **③ [‘인사모 해소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임]**

- ‘인사모’는 조속히 해소 내지 와해시킬 필요성이 큼
- 그러나, 행정처가 ‘모든 연구회는 전문분야와 무관한 소모임 활동을 정리하라’는 식으로 정공법을 택할 경우 **인사모를 표적으로 한 조치임이 쉽게 드러나고 강한 반발을 초래할 우려** 있음
- 중복회원 해소방안은 다소 기술적인 커뮤니티 정비방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전정국장이 현행 규정에 위배되는 중복회원 해소방안을 공지하면서 그 밖의 커뮤니티 관련 규정 역시 소개하고 이에 위반하는 활동을 자제하여 달라고 안내**한다면 법관 사회 반발이나 인사모측의 반발 명분을 최소화할 수 있음

▶ **④ 특별한 사전 준비 작업 없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즉시 시행할 수 있음**

-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를 위하여 어느 정도 유예기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공지와 동시에 직권으로 정리할 것인지 여부 정도만 결정하면 됨

● **시행에 따른 국제인권법연구회 위축 효과**

- 한명의 법관이 가입한 여러 연구회 중 가입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중복가입으로 탈퇴처리할 경우 연구회 회원 수 변동 내역



	현재 가입회원 수	중복가입 탈퇴처리 후 회원 수
국제거래법	221	165
국제인권법	431	204
기업법	214	158
노동법	295	196
도산법	449	283
민사집행법	875	780
언론법	140	92
의료법	291	203
조세법	257	209
지적재산권법	374	209
환경법	245	182

※ 청색표시는 가입회원이 90명 이상 감소하는 연구회

● 부작용 검토

- 중복가입 연구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법관들이 다른 연구회에서 탈퇴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선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중복가입자 정리가 오히려 소장 법관들의 인권법으로의 편중 현상 촉발할 가능성
- 중복가입 정리 외에 아래에서 검토할 ‘부장급 이상 대거 탈퇴 방안’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의 연구범위 명확화 및 인사모 해소 시도 방안’ 등과 함께 시행될 경우 법관들에게 인권법연구회가 논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줄 것이므로, 다수의 법관들이 인권법을 선택할 가능성 희박함

▣ ③ 예산 증액 및 실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

- [필요성] 전문분야연구회 지원예산이 장기간 1억원으로 동결 ⇨ 15개에 달하는 연구회에 대하여 나눠먹기식 분배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평가작업이 어려움

☑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 개최

- ▶ 2016. 6. 9. ~ 11. 사법연수원 소강당(250석 규모)에서 ‘국제 난민컨퍼런스’ 개최
- ▶ 사법연수원과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 개최



- 사법연수원의 국제교류 예산 및 국제실의 예산을 지원받아 대규모 국제행사
 - ▶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커비 전 호주 연방대법관을 비롯한 30여 명의 외국 전문가 참석 예정
 - ▶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회원 급증 가능성
 - 대규모 국제행사(언론 주목 가능성도 큼)를 통해 소장 법관들에게 인권법연구회의 장점과 위상을 각인시킬 가능성 매우 높음
 - 참석 법관들에게 사법연수원 숙소 제공(법관연수동 숙소가 금요일에 비는 것 활용)하는 것 역시 일종의 특혜이자 법관들에게 인권법연구회가 법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줄 우려 있음
 - 한정된 예산을 인권법연구회가 독점하게 됨 ⇨ '난민'은 '국제인권'의 전형적인 안건이므로 연구회의 연구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지원 제한하기도 어려움

- 예산 증액으로 법원행정처의 예산분배 재량범위가 커질수록 **연구실적에 따른 실질적 차등지원이 가능**해짐 ⇨ 연구회 활동에 대하여 **기계적·형식적 평가가 아닌 실질적 평가여건 조성**
- 예산당국 설득 방안 ⇨ 예산 동결된 기간의 **연구회 수 및 가입회원 수 급증, 누적된 연구성과 등 제시 + 타부처 유사 예산 상황 확인**
- 사안에 따라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활동 지원비(약 6억 원)를 활용할 필요 있음
- 기존의 **헌법연구회**가 법관 사회의 인권 관련 연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대규모 행사 개최하는 경우 예산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있음
- 실질적 평가 기준 강화 ⇨ 현행 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과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필요 있음

■ ④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 필요성
 - 커뮤니티 게시글이 대부분 회원 전용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법부 전체 차원의 전문역량 축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학술연구단체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공개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등의 경우 **일부 회원의 사조직적 운영행태와 게시글 비**



공개가 맞물려 회원들에게 ‘**자신들만의 동질감**’ 내지 ‘일반 법관들은 알지 못하는 **이너서클에서 활동한다는 은밀한 만족감**’ 등을 유발하고 있음

● 시행방안

- 커뮤니티 총괄관리자인 전정국장이 언제든지 공지를 통해 시행할 수 있음
- ① ‘법관들이 자신이 가입한 커뮤니티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의 연구성과에도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법관님들의 **전문성 강화와 자율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거나
- ② ‘사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이상 그 **연구성과를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함으로써 사법부 전체의 전문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는 정도의 명분을 제시할 수 있음
- ③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반드시 지식광장에 게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압박**’ 이라는 **일각의 의심을 희석**시키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이 부분은 전정국장이 아니라 각 법원 수석부장 등이 담당)

● [기대효과]

- ① **학술성과 공유**로 사법부 전문역량 강화,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 코트넷 지식공유 활동 활성화
- ② 다른 커뮤니티에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중복가입금지 규정의 엄정한 시행에 따른 불만 내지 부작용 완화**
- ③ 인권법, 노동법커뮤니티 등 **인적 유대 강화의 수단으로 커뮤니티가 적극 활용되는 연구회의 경우** 게시글 공개를 통해 ‘**은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 내지 결속감**’ 을 **약화**시킬 수 있음
- ④ 특히 **인사모의 경우 논의가 사법부 전체에 전면 공개**됨으로써 내부의 논의가 코트넷 자유게시판에서의 논의와 차별화되지 않게 됨 ⇨ ‘**인사모의 자유게시판화**’ 를 통해 **과감하고 도발적인 논의는 위축될 가능성** 있음
- ⑤ 커뮤니티 내부 논의 내용 공개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용이**해짐 (심의관 등이 의심을 감수하며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할 필요 없음)



- **부작용 검토**

- 게시글 공개시 인사모 등의 편향적 논의는 또 다른 폐쇄공간을 찾아 네이버 밴드 또는 다음 카페 등으로 도피할 가능성 큼
- 2015. 5. 우리법연구회의 상고법원 관련 세미나 사례에서 보듯 법원의 공식 연구회 내지 코트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① 훨씬 언론의 주목을 피할 수 있고, ② 공개되어 문제되는 경우에도 ‘특정 성향 일부 법관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방어 논리 활용 가능함

- **폐쇄 커뮤니티와의 관계**

- 폐쇄 커뮤니티 근거 규정 자체를 없앨 필요는 없음
- **인사모의 경우** 폐쇄 커뮤니티로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 커뮤니티 내부에서 비판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연구회장이 ‘인권을 위한 사법제도를 논의한다면서 일반회원의 접근을 막는 폐쇄적 밀실 논의의 부당함’을 지적함으로써 다른 일반 회원들의 지지를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5 연구회 외부 활동 강화 ⇨ 상세는 별도 보고서 참조**

- [시행방안 ①] **‘대형 이벤트’ 발굴 및 지원**
- [시행방안 ②] **매년 정기 평가시 외부 활동 관련 항목 대폭 강화**
- [시행방안 ③] **사법부 우호 인사 확보 방안**

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과잉 확장 관련 대응방안

- ▣ **1 연구회 논의 주제를 허가받은 전문분야의 범위로 제한**

- **필요성**

- 전문분야를 국제인권법으로 특정하여 허가받았음에도 국제적 이슈와 무관한 일반 인권론, 나아가 인권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관한 활동에 집중하는 실태를 타파할 필요
- 심지어 인사모와 같이 전문분야 연구와 무관한 논의를 전면내 내세우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음



● 유의사항

- 이 쟁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학문의 자유 억압’, ‘사법행정에 동조하지 않는 판사들 압박’ 등과 같은 **자극적인 프레임에 의한 반격 예상**됨
- 최대한 유화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큼

● [해결방안 ①] 연구회 회장의 리더십 발휘

- 특히 인사모에 대하여는 전문분야 연구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문제제기 충분히 가능함

☑ 반드시 현행 회장 체제에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차기 회장은 특정 성향의 핵심세력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 높음

- 최근 인권법연구회와 노동법연구회의 급성장 및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의장직 장악 시도 성공 등으로 인한 자신감, 인사모를 중심으로 한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공식 문제제기 등의 공개 행보 강화 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노동법연구회도 2015년에만 95명의 회원 급증(국제인권법과 준회원이 다수인 민사집행법을 제외하면 가장 큰 증가) ⇨ 공식적으로는 ‘전담재판부 법관의 가입을 독려하였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나, 핵심세력의 적극적 확장 노력으로 인한 것일 수 있음

- 대법관 임명제청시 ‘법원 인권법연구회장 명의 반대 성명 또는 재고 요청’ 등은 언론 입장에서 휘발성과 폭발력이 매우 강한 소재가 됨 (2017년 이○○ 대법관님 후임 임명시에는 진보적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는 나름의 명분도 있을 것임)

▶ 현 회장은 사법행정라인에 있으면서도 연구회원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음

▶ 현 회장 체제하에서 인사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차기 회장 체제하에서는 내부적 논의를 통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 ‘행정처의 전면 개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고려해야 하는 극히 부담되는 상황 발생 우려

∴ 그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필요 있음

- 부드러운 리더십 스타일의 현 회장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개설의 초심을 강조하면서 정서적으로 설득·호소할 경우** 다수의 법관이 수긍·동조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임

● [해결방안 ②] 대안적 연구회 신설 또는 대안적 활동 지원

- **‘국제인권’ 이슈가 아닌 일반 인권적 이슈**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회도 얼마든지 학술연구 활동 가능



- 현재 국제인권법 소속 법관들 상당수는 ‘국제인권’이 아닌 보편적 인권 이슈의 관심으로 가입함 ⇨ **보편적 인권 이슈에 대한 다른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은 국제인권법으로의 독점적 유입을 방지**하고, **인권 관련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음
- 대안적 연구회 신설은 다소 어려움 예상됨 ⇨ 추가 검토 필요
- 기존 연구회 중 헌법연구회(또는 형사법, 젠더법)를 중심으로 보편적 인권에 관하여 법관 사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활동 발굴하여 지원 필요 ⇨ 특별 예산 지원 가능한 대형 이벤트 발굴할 필요 있음

☑ 젠더법연구회에 대한 시각 전환 필요성

- ▶ 그간 젠더법연구회의 확장 및 발언력 강화에 대하여 조심스러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어 왔고, 젠더법연구회에 일부 強性的 법관이 있는 것도 사실임
- ▶ 그러나 근본적으로 젠더법연구회의 위상 강화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여성 법관들의 지위 강화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불가역적인 시대의 흐름일 뿐만 아니라,**
- ▶ 무엇보다, 인권법연구회의 핵심그룹 등과 같이 **사법행정라인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근본적인 불신과 반감을 전제로 하는 단체의 활성화가 훨씬 더 위험하고,** 젠더법연구회는 여성인권 문제와 가부장적인 잔재가 남아 있는 조직문화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뿐 사법행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
- ▶ 물론 젠더법연구회의 경우 **행정처와 의견조율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인권 분야의 대안적 연구회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젠더법연구회를 주요 후보로 고려함이 타당하고, 그 활동지원에 제약을 둘 필요는 없음**

■ ② 핵심세력과 다수 법관간 분리 방안

● 필요성

- 핵심그룹의 활발한 활동과 그들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인하여 **소수의 핵심그룹이 연구회 전체의 입장, 나아가 사법부 내의 ‘사법행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 ⇨ 개선 필요

● 시행방안

- **인위적인 개입은 성공확률도 낮고,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간접적 여건 조성의 관점에서 접근 ⇨ **무리하지 않은 수준의 문제제기 내지 논란을 통해 다수 회원의 경각심 내지 우려 일으킴**



- ① 인사모가 연구회의 설립 취지 및 관련 규정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회장의 문제제기
- ② 회원 가운데 법원의 ‘주류 중 주류’로 인식될 수 있는 경력의 선배법관들 다수임 ⇨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명분을 갖추어 **탈퇴하도록 유도**

☑ 선배 법관들의 탈퇴를 통하여 인권법연구회가 논란의 대상이라는 인식 확산

- ▶ 젊은 법관들 입장에서 탁월한 실력과 경력을 갖춘 선배법관이 다수 있어 인권법연구회의 높은 위상과 소속감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음 ⇨ 고법부장 중에서만 성○○, 이○○, 김○○, 유○○, 이○○, 이○○ 부장 등
- ▶ 명분 없이 일거에 탈퇴할 경우 행정처가 배후에 있다는 공격을 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적절한 명분을 갖추어 탈퇴하되, 대거 탈퇴할 필요가 있음**
 - 인사모에 대한 회장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인사모측이 존치주장을 고집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명분이 될 것임
- ▶ 종전 우리법연구회 등의 사례에서 보듯 연구회 활동에 관하여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의 확산만으로도 상당수 법관이 자연스럽게 탈퇴할 가능성이 있음

- ③ 인권법연구회가 그 시스템 및 인적 구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임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부각될** 경우 상당수 회원들의 동의 있을 것임 ⇨ 구체적 방법론은 추가 검토 필요

■ ③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장점을 다른 연구회에 도입

- 지역별 친목 소모임, 팀장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번개 모임 활성화 등은 우리법연구회의 시스템을 상당수 모방한 것으로서 회원간 유대강화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젊은 법관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음
- ⇨ 도입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다른 연구회와 커뮤니티에서도 적극 도입·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인권법연구회만의 장점 희석 + 다른 연구회 활성화

■ ④ 설립 목적 위반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방안 검토

- 관련 규정 ⇨ ① 연구회는 폐쇄 규정 없고, 설립허가 취소 가능, ②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정국장 또는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폐쇄 가능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2조(연구회의 설립허가)

③ 제2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 ⇨ **반대해석상 설립허가 취소 가능**

☑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0조(커뮤니티의 폐쇄)

④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당해 커뮤니티 회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게시물의 이전 또는 삭제, **커뮤니티의 폐쇄**, 커뮤니티 운영자 변경, 코트넷 이용권한 제한을 비롯한 코트넷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이 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관리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커뮤니티 폐쇄, 운영자 변경 또는 커뮤니티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되더라도 바로 해당 커뮤니티가 폐쇄된다고 보기 어려움

● 시행 타당성 검토 ⇨ 명분 약하고,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소극

- ① **설립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시** ⇨ 법관 사회의 강력한 반발 예상 + **취소권자인 행정처장님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부담있으므로 극히 신중할 필요(예산 제한 등을 통한 간접적 압박 검토)
- ②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는 커뮤니티 등** ⇨ **코트넷 운영위원회에서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 조치 가능하나,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할 필요 (**행정처의 불통·권위적·관료적 이미지 악화**, 이를 경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신중 검토 필요)

▣ 5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방안 검토

- 연구회 및 커뮤니티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활동계획을 보고하게 한 뒤 승인 또는 수정요구 등 회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있음
- 검토 의견 ⇨ 소극



- 법관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에 대한 계획 승인 또는 수정요구 등은 그 자체로 조심스럽고,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 및 탄압 논란을 피할 수 없음
- 법원행정처가 그로 인한 논란을 정면으로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 부담이 크고, 수정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 보도 가능성도 농후함
- 행정처(결국 대법원장님, 처장님) vs 인권법연구회 또는 진보 법관세력의 대결구도가 설정될 위험성이 매우 높음

다. [참고] 검토의견을 종합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및 로드맵 예시

- 인사모에 대하여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연구회의 시스템 전반 대응방안을 제외한 인사모 관련 방안을 종합함
- [선결문제] 시기적·정무적 검토 ⇨ 사법행정위원회 진행 중 연구회 관련 조치 착수 여부
 - 현재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4. 11. 선정안건 발표 4. 25. 위원들 검토기간이 5. 6.까지로 각 예정되어 있음 ⇨ 위원회 정식 회기는 5. 9.부터 13.까지 1주간
 -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 강화’로 민주적 정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축제기간에 연구회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의의를 반감시킬 우려도 있음
 - [1안] 새로운 연구회 발굴 및 개설에도 상당한 준비기간 필요하므로 사법행정위원회 종료 후 시행하는 방안
 - [2안] 인사모의 활동이 점점 강화되고 사법행정위원회 활동에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위험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대책 시행하는 방안
 - 각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는바, 이하에서는 우선 즉시 시행하는 2안을 전제로 로드맵을 예시하기로 함



시기	방안 예시
4월 하순	<p>◆ 전정국장 명의 공지</p> <p>'① 커뮤니티 활동 중 특별히 중요하고 가치있는 활동에 대하여 특별예산 지원 방안 도입 (본래 기초실장 명의 공지사항이나 한번에 공지함이 효율적일 수 있음)</p> <p>②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 예정 (일반 법관들 피해 명분)</p> <p>③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로 전환 (사법부 전체 역량 강화 등)</p> <p>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규정 설명하면서 연구회 목적과 무관한 소모임 해소 당부'</p>
5월 초순	<p>◆ 국제인권법 회장의 문제제기</p> <p>'인사모의 경우 연구회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데, 이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함'</p>
5월 중순	<p>◆ '사법국제화 연구회' 및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로' 연구회 신설</p> <p>⇒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이벤트 등 공지 및 활동 개시</p> <p>◆ 다른 연구회 활동 활성화 (밴드 및 지역별 모임 등)</p>
5월 하순	<p>◆ 고법부장 등 명망 있는 선배 법관들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대거 탈퇴</p> <p>- 인사모 소모임이 존치 입장을 고수할 경우</p>
6월 이후	<p>국제인권법연구회 다수 회원의 의견을 모아 인사모의 자연스러운 소멸 유도</p>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국제인권법연구회) 논의 보고 (대외비)

2016. 4. 7.

국제인권법연구회

1.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

가. 연구회 설립 경과

■ 2011. 10. 21. 창립총회

- 선출 : 회장 김○○, 간사 겸 학술총무 이○○, 문화총무 이○○, 소모임총무 이○○
- 2011. 8.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 및 회원가입 안내’ 공지문상의 활동계획¹⁾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응답
 -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 성과의 정리 및 정보의 공유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심포지엄, 외부강연 등 학술모임의 개최
- 초기 회원들 : 김○○, 김○○, 김○○, 김○○, 김○○, 김○○, 나○○, 류○○, 박○○, 사○○, 서○○, 송○○, 안○○, 유○○, 윤○○, 이○○, 이○○, 이○○, 이○○, 정○○, 차○○, 최○○, 홍○○, 황○○ 등

■ 2012. 11. 30. 총회

- 선출 : 회장 유임, 간사 유○○, 학술총무 김○○, 기획총무 김○○

■ 2013. 11. 22. 총회

- 선출 : 회장 김○○, 간사 김○○, 학술총무 안○○, 기획총무 신○○
- 주요 논의내용

1)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임시간사) 공지



- 법관론, 사법부의 독립 등
- 2014. 1. 커뮤니티 밴드 개설 ⇨ 연구회 활성화

■ 2014. 11. 21. 총회

- 선출 : 회장 이○○, 간사 김○○
- 2014. 11. '인권편람' 번역작업 완료 : 연구회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제4장 법관, 검사, 변호사의 독립과 공정성'

나. 소모임 관련

- 연구회 내 소모임은 '분과위원회'와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회원 5명 이상이 모여 bottom-up 형식으로 구성됨
- 소모임 대표(분과위원장)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체적으로 대표를 선정하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이 관례임

2.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가. 설립 경과²⁾

■ 2015. 7. 7. 박○○ 판사의 제안

■ 2015. 7. 21.자 첫 예비모임

- 이○○ 부장판사 등 12~14인 참석
- 선출 : 분과위원장(대표) 김○○, 총무 박○○, 김○○
- 주요 논의 내용 : 법관사회 내부의 소통, 사무분담, 상고법원 등

■ 2015. 8. 11.자 두 번째 예비모임

- 이○○ 부장판사 등 16인 참석
- 총무 2인 중 김○○ 부장판사가 빠지고 박○○ 판사가 제1총무로 선출됨
- 주요 논의 내용 : 상고법원

2) 설립과 활동은 모두 코트넷의 커뮤니티 공지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짐



- 가칭 ‘상고법원 끝장 토론회’ 로 모임 명칭 부여
- 이○○ 부장판사가 찬성론, 이○○ 부장판사가 반대론으로 각 기초발표 후 난상토론 ⇨ 결론을 내지는 않음

▣ 정식 첫 모임에 앞선 회장 접촉

- 2015. 9. 9. 회장 주재 인사모 저녁식사 - 김○○(대표), 박○○(총무), 이○○(최연장자), 이○○
- 회장 발언 요지 : 인사모의 커뮤니티 外 활동 권유, 모임 결과 공지의 문제점 지적
 - 人事 등 사법제도 논의가 연구회 소모임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 인사모 결과 내용, 특히 민감한 내용의 커뮤니티 내 게시가 적절한지 여부 (소극)
 - 법관으로서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만들어 제도 개선을 꾀하자는 취지의 소모임인 ‘인사모’의 운영 개선 필요성 : 사법행정 책임자들의 제도 개선 및 소통의 노력
 -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체를 생각하여야 할 필요성의 강조 : 커뮤니티 지원의 증대, 국제인권 관련 해외 기관에의 파견, 국제인권 관련 회의 출장, 커뮤니티 내 인권자료실의 코트넷 상설화 등 연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
- 반응
 - 회장 발언 취지에는 공감하고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고 함
 - 일단 공지 문제는 dry하게 간단히 결과만 공지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함

나. 정식 모임

▣ 최근 활동

- 제1회 : 2015. 9. 14. ‘바람직한 합의부의 조직과 운용’ (재판장과 배석의 관계) 중 업무적 측면 - 20여 명 참석, 새벽 2시 넘어 마쳤고, 김○○ 당시



고등부장, 이○○ 부장판사, 이○○ 판사 등이 뒤늦게 합류

- 제2회 : 2015. 10. 19. 위 주제 중 생활적 측면 - 15명 정도 참석
- 제3회 : 2015. 11. 13. '사실심 충실화' 1차 토론회
 - 발표 차○○ 판사, 지정토론 김○○, 이○○ 부장판사
 - 주제발표 : 독일의 재판제도와 그 운영에 비추어 본 대한민국 재판 현실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
- 제4회 : 2015. 12. 11. '사실심 충실화' 2차 토론회
 - 발표 : 이○○ 부장판사, 박○○ 판사
 - 주제발표 : 시행 중의 각종 재판 모델의 소개 및 논의
- 제5회 : 2016. 1. 29.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방안'
 - 2015. 12. 8.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구상을 설명한 처장님의 공지문 발표 이후 열림
 - 주요 내용 : ① 사법행정과 재판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무엇이고, 사법행정권자와 법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②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와 가장 이상적 방안은 무엇인지, ③ 사법행정에 참여할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선출” 방식은 무엇인지
- 제6회 : 2016. 2. 26. '사법행정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 송○○ 판사의 건의문에 이은 2016. 2. 19.자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정, 2016. 2. 25.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정에 대한 안내에 관한 차장님 공지문 발표 직후 열림
 - ⇨ 위원 추천권자가 고등법원장으로 한정된 점에 실망 표시
- 제7회 : 2016. 4. 8. 예정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의 향방'
 - 모임 공지문에서, 2015. 9. 2.자 처장님의 공지문 내용과 2016년 정기인사에서 이원화 제도에 균열이 생겼다는 취지의 한겨레 보도를 언급



- 법관 인사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천명

3. 이○○ 부장과의 대화

가. 경위

- 2016. 4. 3. 주말 회장에게 전화 ⇨ "제가 인사모를 책임져야 할 것 같다. 박○○이나 박○○등은 다른 업무로 바쁘고 김○○ 부장도 지방을 가서 책임자가 없다. 회장님을 만나 상의하고 싶다."
- 2016. 4. 7. 점심에 만남

나. 대화 내용

■ 이○○ 부장 : 개인적 생각일 뿐이라는 전제 하에 다음을 설명함

- 사적 대화 내용이므로 중략

■ 양형실장 : 자세한 의견 제시보다는 설득에 주력

- 사법행정운영자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하여 잘못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의견은 내부에서 논의되고 소화되는 것이 맞고 그러한 논의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외부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많고 법원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이 부장이 인사모를 책임진다는 것은 인사모가 연구회는 물론 법원에 미치는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인사모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외부로 나가지 않을 경우 대다수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인사모가 연구회 내에 잔존할 경우 인사모 활동이 곧 연구회 활동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
- 행정처가 인사모를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이 연구회 본연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 설령 젊은 법관들이 혁신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 부장은 타협과 조정의 중재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 이 부장의 의견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자.

■ 이○○ 부장의 정리

- 사적 대화 내용이므로 중략

4. 결론

- 인사모가 연구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그러나 인사모가 연구회 내에 잔존하는 경우 커뮤니티 관리 차원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봄
- 이○○ 부장의 발언 내용을 전부 믿을 수 없으나, 선을 넘지 않겠다거나 사전 상의를 하겠다는 약속, 행정처에 대한 건의사항의 전달, 인사모에 대한 우리법연구회의 영향력 행사에 관한 의견 등에 있어서 이 부장의 진심을 두어 차례 확인하였는바, 어느 정도 선의는 갖고 있다고 판단됨
- 추후, 인사모에 대한 공식적 경고 방안,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관리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5. 기타

■ 2016. 4. 8. 인사모 관련

- 회장 이○○ / 간사 이○○, 김○○, 이○○, 김○○³⁾
- 참석 인원 10인 이하 - 역대 최저 수 참석
- 카톡방 개설되어 있음 - 28인

[끝]

3) ○○기, ○○지원 근무

인사모 대응 방안 (4)

1. 검토 배경

▣ 국제인권법 소모임 “인사모” ⇨ 연세대와 공동학술행사 추진

- (잠정적) 공동세미나 일자 : 2017. 3. 25. 토요일
- [세미나 주제] 대주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법관인사 이원화제도의 폐지’, ‘고등부장 제도의 문제점’,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집중’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 [발표] 연세대 이○○ 교수, 서울대 이○○ 교수, 김○○ 부장판사 등

▣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운영위원회 개최 움직임

- 2017. 1. 15. 일요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개최하여 공동세미나 추진 승인할 예정
 - 2017. 1. 12. 목요일부터 운영위원들에 대한 통지 절차 개시

▣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인사모는 최초 설립 당시부터 국제인권법 커뮤니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소모임이었으나, 법관 사회 반발을 우려하여 현재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중임
- 국제인권법 커뮤니티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주제로 대학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경우 부정적 파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임 ⇨ 적극적 대응책 마련 필요

2. 공동학술행사의 문제점

▣ 국제인권법 커뮤니티의 **설립 목적과 활동 범위에** **反함**

- “**법관 인사제도 연구**”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칙 제1조, 제8조에서 정한

“국제인권법 분야” 또는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에 포함되지 않음은 명백함

- ‘사법권 독립 → 국민 인권 보장 → 국제인권법 범위 포섭’ 논리는 비약
- 모든 커뮤니티에서 같은 방식의 논리 가능
 - (예) 법관 과중한 업무 → 법관의 건강권 위협 → 재판의 질 저하 우려 → 재판청구권의 충실한 보호 역행 → 의료법 커뮤니티 논의 가능

● 공동학술행사 ⇨ 커뮤니티 공식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문법률분야의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회의 설립허가)

③ 제2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활동)

①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2.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
3.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해당 분야에 관한 법률심포지엄의 개최

제10조(기타)

각 연구회는 이 예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회를 통하여 해당 연구회의 운영 등에 관한 회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칙◆

제1조(목적)

이 연구회는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와 논문발표, 세미나, 국제교류 등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그 연구 성과를 재판실무에 반영하여 국민과 인류에게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활동)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2.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
3.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법률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개최
5.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국제 교류

3. [총론] 대응의 기본 방향

■ ①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됨

- 문제 해결의 주체는 現 회장임 ⇨ 전임 회장이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
- 법원행정처가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회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후속 조치가 있을 것임을 암시해서는 안 됨

■ ② 철저하게 '단체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접근해야 함

- 어떠한 경우에도 '법관 인사문제'라는 주제를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됨 ⇨ 회장은 "판사들이 법관 인사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를 전제로 핵심 세력과 대화를 해야 함
- 문제는 ① 커뮤니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② 커뮤니티 예산을 활용하여, ③ 외부와 연계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④ 커뮤니티 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임
 - 특히, 소모임 운영자들이 행사 목적·발표자·주제·일시·장소까지 다 정한 후 회장과 운영위원회를 '승인'의 절차적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음
 - 현재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핵심 세력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매우 비민주적이며 패권주의적인 처사임
 - 특정 계파 중진 모임 결의사항을 정당 최고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승인받으려는 것
 - 과거 학생/사회운동 및 진보정당에서 NL 계열이 보여주었던 비민주적이고 패권주의적인 모습과도 유사(예: 한총련, 통진당 등)
- 現 회장은 핵심 세력이 보여주는 비민주적인 모습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확인

함으로써 ‘단체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해야 함

4. [각론] 구체적인 대응 방안

■ 2017. 1. 15. 운영위원회 속행 ⇨ 사임하겠다는 뜻 시사

- ① 회장은 사전에 전혀 공식 논의를 한 적이 없어 현 상태에서는 결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① 커뮤니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② 커뮤니티 예산을 활용하여, ③ 외부와 연계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
- ② 만일 운영위원들이 회장에게 강력하게 반발할 경우, 차분한 어조로 위와 같은 설명을 반복하면서, ④ 위와 같이 문제점이 많은 이례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커뮤니티 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단체 운영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 같다는 설명을 추가함
- ③ 운영위원들이 계속 반발할 경우,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더 추가로 논의해 보자고 하면서 속행하자고 주장
- ④ 운영위원들이 속행하자는 주장에도 반발할 경우, 회장은 “여러분들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제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만 회장직을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 ⇨ 회장이 사임의 뜻을 시사하면 운영위원들이 더 이상 강경한 주장을 할 수는 없고, 속행에 동의할 것이며, 아마도 뒤풀이에서 이야기하자면서 뒤풀이 자리로 이어질 것임

■ 2017. 2. 말 운영위원회 개최

- ‘소모임’ 주관 행사로 개최할 것을 주장
 - ‘커뮤니티’ 주관 행사 고수 시 ‘임시총회 소집’도 검토 가능(단,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할 필요 있음)

■ 커뮤니티 주관 행사 고수 시 주요 대책

- ① 커뮤니티 명칭 사용 및 회비 지출 승인 거부

- ② 신입 회장 학술대회 불참 → 신입 회장 사임
 - 신입 회장 사임하면서 고법부장 이상 회원들도 함께 탈퇴하는 것이 적절
- ③ 예산 지원 감축(최소화) ⇨ 법원행정처의 결산 심사 및 관리 강도 강화
 - 예산 지원 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8조(활동)

- ② 연구회 간사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1년 동안의 활동성과, 회원현황, 결산현황, 및 당해 연도의 활동계획, 소요예산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 설립 목적 위반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방안 검토

- 관련 규정 ⇨ ① 연구회는 폐쇄 규정 없고, 설립허가 취소 가능, ②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정국장 또는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폐쇄 가능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2조(연구회의 설립허가)

- ③ 제2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 ⇨ 반대해석상 설립허가 취소 가능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0조(커뮤니티의 폐쇄)

- ④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당해 커뮤니티 회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권한)

- ① 운영위원회는 게시물의 이전 또는 삭제, 커뮤니티의 폐쇄, 커뮤니티 운영자 변경, 코트넷 이용권한 제한을 비롯한 코트넷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이 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관리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커뮤니티 폐쇄, 운영자 변경 또는 커뮤니티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되더라도 바로 해당 커뮤니티가 폐쇄된다고 보기 어려움

- 시행 타당성 검토 ⇨ 명분 약하고,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소극
 - ① 설립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 시 ⇨ 법관 사회의 강력한 반발 예상 + 취소권자인 행정처장님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부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할 필요
 - ②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는 커뮤니티 등 ⇨ 코트넷 운영위원

회에서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 조치 가능하나,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
할 필요 (행정처의 불통·권위적·관료적 이미지 악화, 이를 경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신중 검토 필요) <끝>

인사모 1회 모임 정리

참가(가나다순): 강○○, 김○○, 김○○, 김○○, 김○○, 박○○, 박○○, 사○○, 송○○, 신○○, 이○○, 이○○, 이○○, 이○○, 정○○(이상 15명)

사회: 박○○

반대 발제: 이○○

찬성 발제: 이○○

반대 추가 토론: 김○○

찬성 추가 토론: 김○○

정리: 박○○

[반대발제 주요 내용] - 별도 발제문 사용

상고법원(안)의 개요(필요성의 논거,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구성 및 운영방안), 상고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상고의 주된 이유는 사실심에서의 심리절차에 대한 불만족과 판단결과에 대한 불복, 상고심에서의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감, 법리적 판단에 문제가 없을 경우 사실문제를 통해 사실심의 판단을 번복하고자 하는 기대감 등일 것이다. 사실심의 심리미진이나 부실이 상고사건 증가의 원인이라면 사실심 강화를 통하여 상고사건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고 오히려 상고법원 설치의 사실심의 강화가 아니라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사법부 인적 구성 및 가치의 다양성 부족, 사법관료주의의 심화 등을 초래하여 국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의 사실심 개입과 전관예우 기대감이 상고사건의 증가를 자초하고 있는지 살펴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정책법원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상고법원의 문제점(추진절차상에 국민과 일선법원이 없는 문제점, 실익이 없고 판례위반을 주장하며 특별상고를 할 것이므로 남상고의 우려가 있고 대법관 출신 전관변호사의 양산, 특별상고가 폭증할 경우 법원의 업무 부담 가중 등으로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우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이 분류되는 문제. 사실심 약화의 초래. 상고법원에서 심판할 사건에 대한 판단기준의 불명확. 상고법원으로서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아 시의적절한 판례변경의 기회를 놓칠 우려. 고위법관에 치중된 제도 추진. 민주적 정당성 확보 절차가 없거나 요식행위로 전락할 우려, 인사권자의 의중만이 사법부의 정의로 오인되는 등 사법부 구성 및 판단에서의 관료화 심화 및 수직적 계층구조 형성)(35분 정도 소요)

[찬성발제 주요 내용] - ○○ 실장이 작성한 기존 글 참조

상고법원 안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어 온 연혁에 관하여 간단히 발제[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법원도 미국 대법원처럼 운영(현재 '정책기능'이라고 논

의되는 것으로 보임 - 기록자 생각)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대법원은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이었다. 청와대의 지원 아래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선추진위원회(사개추위)를 거치면서 대법원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대법관 증원, 고등법원 상고부 등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고등법원 상고부 법안이 마련되고 현재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이 상고부 건물 예산으로 건축되었으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고등법원 상고부 안과 상고법원 안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당시 고등법원 상고부 안을 대체로 찬성하였던 사람 중 진보적 인사들은 상고법원 안을 반대하지는 못하고 대법원의 다양화를 조건으로 내거는 정도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재야에서 대법관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법원은 상고법원 안을 제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커지는 부분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고등법원 상고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법원 내의 반발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상고법원 안에 대한 법원 내 반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분 정도 소요)

[반대 추가 토론]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전혀 없는 등 문제가 있는바, 판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법관협회 등의 통로가 있어야 한다.

[찬성 추가 토론]

현재 대법원의 업무가 과중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전원합의체 사건 발굴 등의 어려움으로 양○○ 대법원장 취임시 전원합의체 100건을 공언하였으나 20건 정도에 불과한 현실이다. 상고법원 추진에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과 비교하여 대법원 판결의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미미하다는 보이지 않는 위기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고법원이 설치될 경우 심리불속행 제도가 폐지되기는 하지만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따르면 상고법원 판결 역시 심리불속행과 유사하게 간단하게 작성할 것이므로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하급심이 약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법원행정처가 국민과 법원을 기망하는 것이다.

[전체 토론]

- 대법원이 권리구제기능을 상고법원에 넘기는 경우 정책법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 현재의 대법원은 대법관 14명이 아니라 대법원장 1명이다. 인적구성의 다양성 없이 지금처럼 획일적 사고를 하는 대법관만 뽑아두고 정책법원화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정책법원이라는 표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해결해야 하는 하드케이스가 얼마나 되는가. 만일 그런 하드케이스가 없다면 정책법원화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 ○○ 실장의 글에 따르면 170건 정도가 사회적 영향력이 큰 하드케이스라고 하면서 전원합의체로 가야 한다고 한다.
- 제도를 누가 추진하는가도 중요하다. 고등법원 상고부 추진 당시에는 대법관 다양화를 전제로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수직적 관료적 사법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대법원의 업무를 덜어내려는 것이다. 상고법원제도는 헌법이 예견하지 않은 가장 과격한 안(가장 덜 과격한 안은 상고허가제)이고 사실상 4심제가 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상고법원제는 대법원 개혁을 인정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을 폐지하면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된다는 하지만 심리불속행이 폐지되더라도 국민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는 사실상 미끼에 불과하고, 단지 사건을 떼어내기 위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다양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풍부한 소수의견이 없이 13대0으로 하는 전원합의체는 정책법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정립하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현재에서 볼 때 정책법원은 공허하고 권리구제는 환상이다. 대법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내걸고 있는 상고법원의 조건 등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 헌법재판소와 달리 법원의 역할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권리구제이고 대법원의 법령해석은 권리구제에 있어서의 법령해석이지 나라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정책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정책법원이라는 용어는 본질적인 부분과 동떨어진 용어로서 선언적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 억지 주장에 대하여 엄청난 인력을 투입하고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 것이 본질인데 대법원은 그런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거냐고 반문하고 있다. 3기수 정도의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말도 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세금을 비합리적 주장에 쏟는 것을 막으려면 상고허가제를 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국민 여론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서 상고법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대안이 있다.
- 과연 대법원이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법원은 87년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노무현 정권때 사개추위가 생기는 과정에서 정책법원을 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런데 지금 대법관 증원을 요구하니 까 정책법원화 하겠다고 주장하는 재미난 현실이 발생한 것이다. 대법관들은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등으로 대법원이 현재 밀리로 들어가는 것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대법원이 권리구제만 하고 정책법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책법원에는 동의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 개인적인 권리구제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처럼 그 판결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고 헌법은 헌법재판소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석으로 기준으로 법원이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인데, 대법원이 사건이 많아 이러

한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고허가제도 사실은 모든 사건을 다 심리하여 상고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인데 심리불속행도 그와 같이 운영하면 되는 것임에도 대법원이 채증법칙위배 등으로 자초한 면이 있다. 따라서 지금 제도에서도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상고법원은 아닌 것 같다.

- 상고허가제와 심리불속행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정책기능과 권리구제기능은 같이 가는 것이지 하나를 떼어두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책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법, 즉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가치이다.
-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그런 논의를 제시하고, 만일 국회가 요구하면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텐데, 그러면 오히려 극우적 인사가 대법원에 들어갈 수도 있다.
-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는 사건이 얼마나 있는지.
- 전원합의체 같지 않은 사건, 예컨대 13대0으로 나오는 그런 사건을 제외하면 지금 진정으로 전원합의체 같은 사건은 20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된다.
-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많은 하급심에 영향을 미칠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를 열어 공개변론을 하여 하면 좋을 것 같다.
- 대법관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그런 다양한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발굴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 대법관들이 평생을 사실심을 하던 사람들이라 법률심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아 심불 사건도 꼼꼼히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의 심불이 상고허가제처럼 운영되지 못하고, 대법관 임기가 4년 쯤 되면 비로소 능력이 생기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 대법원이 정책기능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 모두 동의하는 것인가?
- 대법원이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대법원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하다는 것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 뜬금없이 행정부 식으로 정책법원이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권리구제사건을 떼어내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 정책기능과 권리구제기능은 양면인데, 정책기능을 강조하면 권리구제기능이 약화될 우려도 있지 않나? 형사 성공보수금 사건과 같은 경우 심불로 올라갔다는 신문기사가 있었는데 이런 사건의 경우 판례변경이 되지 못할 수 있지 않나? 정책기능과 권리구제기능은 같이 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지 떼어내기는 문제가 있다.
- 전원합의체 많이 한다고 정책법원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13대0만 나온다면 아무런 의미가 있다. 정책법원이라는 의미는 다양한 내용의 의견이 나와야...
- 정책법원의 역할은 헌법재판소가 하면 되고, 대법원은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하

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 상고허가 요건과 심리불속행 요건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심리불속행을 엄격히 하면 상고허가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 그렇다.
- 심리불속행을 상고허가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대법원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옳은 것인가?
- 심불 요건에 맞추면 심불이 80%는 되어야 하는데, 60~70%만 되도 못 건디고, 전관예우나 고위법관의 압력에 못 건딘다.
- 신건조에서 심불 기준이 1심과 2심이 다른 경우, 3억 이상이면 안되고, 대형로펌이 3억 이상에 다 뛰어 들고, 상고허가제처럼 갈려면 대법관들이 심불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하는데, 대형로펌과 전직 대법관이 들어오고 소가가 100억 이상 되면 부담되어서 심불 못한다. 상고법원이 되면 심불 사건 다 써주겠다고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고안하겠다고 한다.
- 상고법원이 생기면 압력에 따라 종래 심불사건도 길게 쓸 수밖에 없다.
- 행정처가 여기서 판사들에게 하는 말이랑 밖에 가서 하는 말이 다르다. 판사들에게는 업무량이 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밖에서는 자세히 써 줄 것이라고 말한다.
- 상고법원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데, 판결문을 자세히 써서 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권리구제 해 주겠다고 했는데 파기율이 낮거나 판결문이 간이하면 외부에서 비판이 나올 것인데, 상고법원을 성공적이라 할려면 결국 파기율을 높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판결도 자세히 쓸 수밖에 없을거다.
- 그러면 또 상고가 늘게 될 것이다.
- 심리불속행 제도가 도입된 과정의 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법원은 사실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안을 가지고 국회에 갔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안 문구를 수정하면서 사실문제를 건드리도록 바꾸었기 때문에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사실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 국회에 법안을 올릴 때는 추가 인력 및 예산은 필요 없음이라고 올렸고 판사들에게는 업무량은 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판결 이유를 자세히 써 준다고 말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이고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쳐야 하는 것이다.
- 그건 다 거짓말이었다.
- 결국에는 사실심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 상고법관들이 대법관들의 인정을 받으려면 파기도 2~3배 하고, 판결도 많이 쓸 텐데, 그러면 법관 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될텐데, 노령화되면 문제가 크다.
- 심리불속행 제도의 국회 통과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될 것이다. 원칙이 상고허가제라면 상고법원을 하기 위해 심불을 포기한다는

-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사적체 해소와 판사들의 통제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해서 선뜻 찬성하기가 어렵다.
- 곧 지방부장이 될 재판연구관들을 심불 사건 처리하라고 상고법관 보내는 것에 대하여 재판연구관들이 불만이 있다.
 - 모 대법관은 상고법원이 되지 않으면 심불을 심불에 맞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심불제도를 제대로 운영해 보지도 않고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 심불을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심불제도 위헌이 나올 수 있다. 예전에 5:4로 합헌이 난 사실이 있다.
 - 행정처는 판사들에 대하여 국민들의 시각에서 생각해야지 판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 상고법원은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국민들의 비용이나 고통이 더욱 가중되게 된다. 결국 4심까지 가게 되는 것이니까 1심에서 당사자들의 재판 성실도도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시간적 차이에 따른 재판청구권 실현에 차등이 생기게 된다. 결국 국민들의 비용으로 변호사들의 시장을 만드는 결과가 된다. 내부에서는 인사적체 해소가 되는 것이다.
 - 국민들이 법원 내부의 사정을 너무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된다.
 - 작년에 법관 350명 증원안이 통과되었는데, 인원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와 같은 증원으로 충분히 해소된다는 논리로 대응할 것이다.
 - 1심 증가율보다 상고사건 증가율이 높는데, 정말 하급심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 1심 중 합의 사건 증가율과 상고 사건 증가율을 비교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1심은 대부분이 단독인데 금융기관 단독 사건 등이 갑자기 늘고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 합의부 사건의 증가율이 중요하다.
 - 서기호 의원의 자료를 보면 이○○ 대법원장 시절 공판중심주의 구술변론주의를 한 사건이 상고될 무렵의 통계는 상고율이 떨어졌다는 것이므로, 그런 면에서는 사실심을 충실화하면 상고사건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 하급심이 충실화되더라도 변호사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상소사건이 주는 것은 어렵고 유일하게 유의미한 통계 수치는 조정과 화해이다. 이는 상소권을 박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 ○○ 실장은 상고법원과 하급심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급심 강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 상고법원을 하면 하급심이 오히려 약화되기 때문이다.
 - 그런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판사 증원으로 해결되므로 사소한 문제인 것이 아닌가?
 - 그러니까 인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하급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약화, 상고법원에서 다 해준다고 하니까 상고법원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므로, 하급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진다.

- 상고법원까지 가고자하는 국민의 욕구 때문에 사실심의 약화는 필수적이고 병행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 동료 법관들이 상고법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사법관료화의 전형적인 문제이다.
- 예전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는 이렇게 과감하게 상고사건을 떨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 상고부 안은 법률에서 일정 사건을 대법원 사건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대법관들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거나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상고부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그것이었는데, 민사사건의 소가를 기준으로 대법원 사건을 나누는 것은 문제이다. 작은 사건도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이다.
- 법률에 따른 상고 이외에 수리상고라고 하는 보충적 제도가 있었다.
- 상고사건이 많아지는 것은 1심과 2심이 빨리 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결국 상소제도가 보장되어 있는 이상 최종심까지 가게 되는 것이지, 우리 국민이 상소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이다.
- 행정처가 김○○ 부장에게 대안을 요구한바, 부장님은 연구관을 반으로 줄이면 대법관들이 힘들어서 심불을 심불답게 운영할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 “판단의 관료화”가 문제이다. 상고법원이 대법원 판결에 반할 수 없으므로 하급심 판결도 결국 대법원 판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대법원의 현안(상고법원 등) 추진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못하였다.
- 추진 절차도 중요한 포인트이고, 인사권자가 판사들 승진 단계를 세분화하여 통제하는 문제, 고등 대등부를 무효화하고 고등을 지방법원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상고법원을 고등법원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점 등 논의할 부분이 많은데 다 다루지 못했다.
- 16명까지 대법관을 증원하면 전원합의체에 어려움이 없고 사건 감소 효과도 만들 수 있다.
- 3명을 더 늘이는 것으로 사건이 줄어들 것인지 의문이다.
- 증원을 하더라도 저절로 다양화 되는 것은 아니고, 1명씩 뽑는 방식을 4명씩 뽑는 방식으로 바꾸든지 하여야 다양화 될 수 있다.
- 현재 상태에서 풀을 한 결과: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 10명,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의견 6명, 상고법원 등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1명.

새로운 소모임의 구성 알림 및 경과 보고

2015. 7. 7.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게시한 바와 같이 인권 관련 사법제도 연구 모임에 대한 저의 제안에 동참한 14명의 회원이 같은 달 21일 준비모임을 하였고, 향후 모임의 운영 방식과 연구 계획 등에 관한 구상을 할 시간이 필요하여 제1회 모임으로 2015. 8. 11. 현재 사법부의 현안인 '상고법원'에 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오고 간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의견의 주요 논거는, ① 대법관 1인당 3,000건 정도에 이르는 현재의 대법원 업무의 과중한 부담은 중요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이를 긴급하게 해소할 필요 (양○○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100건 선고를 공약처럼 말하고 취임하였으나 실체는 20여 건 선고에 그칠 정도로 업무 부담이 과중함),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대법원의 위상과 판결의 영향력이 작게 느껴지는 것은 그 정책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므로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을 적절한 수준으로 감소시켜 정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 ③ 경력이 많은 상고법원 판사가 변론을 통해 사건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만장일치를 통해 판결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④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법원 구성원들도 반대하지 않았던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와 근본적 차이가 없어 도입에 따른 법원 내부와 외부의 거부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상고부를 서울에만 설치하려는 것에 대하여 지방 소재 법관들의 반발이 있기는 하였음), ⑤ 심리불속행 제도의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이 가져간 문구를 수정함으로써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심리하여 파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상고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점, ⑥ 상고허가제가 더욱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이는 전두환 정권에 의하여 도입되었다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폐지된 역사적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고, 반대 의견의 주요 논거는 ①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부족하였음, ② 헌법재판소와 달리 구체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라는 법원의 역할에 비추어 정책기능과 권리구제기능은 양분할 수 없고, 전원합의체만 하면 마치 정책기능이 회복된다는 식의 논리는 실증되지 아니함, ③ 법관들을 상대로는 '업무량이 늘지 않는다'고 홍보하는 반면, 변호사나 국민들을 상대로는 '심리불속행을 폐지하고 변호사 강제주의를 통하여 실질적 변론을 열며 구체적 이유를 기재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모순된 설명이고, 결국 법관의 업무부담 가중이 수반될 것인 점(현행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도 충분한 기록 검토를 통한 결론으로서 그 이유기재만 간략히 한 것임에도 이를 폐지하면 기록을 더 자세히 보고 권리구제도 충실해 지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④ 당사자는 상고법원까지 심리의 연장을 고려하여 오히려 하급심을 무시하고 상고법원에 더 집중하여 상고사건이 오히려 증가하고 하급심 충실화에도 역행하게 되는 점(하급심 인원을 빼서 상고법원을 구성하는 문제는 법관 충원으로 해결하면 됨), ⑤ 승소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소에 응소하는 부담

이 증가되고 판결 확정이 지연됨으로써 오히려 권리구제가 소홀해지고 소송비용이 증가함, ⑥ 하급심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남상소를 막을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며 심리불속행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면 현재의 상고제도 아래에서도 상소 사건 감소를 통한 상고심의 정책기능 강화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그동안 소모임 운영위원회의 논의 결과 앞으로의 회의는 1년 무렵의 기간에 해당하는 주제의 발굴과 연구 담당자 선정을 통하여 외부 발표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발표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그 목표를 정하였고, 제2회 모임의 주제는 ‘바람직한 합의부의 조직과 운영’으로서 부장과 배석의 입장에서 바라본 합의부의 문제점을 공유, 토론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합의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논의를 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 모임 일시는 2015. 9. 14.(월) 오후 7:30

* 장소: 카페 인프라 (?)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6. 4.

법원 행정처

〈 요약 〉

1. 검토 배경

가. 전문분야연구회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점검 필요

■ 2000년 관련 예규 제정 후 15년 이상 근본적 변화 없이 유지 ⇨ 법관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기에 미흡

■ 연구분야 주제는 물론 연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필요

나. 특정 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

■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이 회원 수 및 활동 외형에서 폭발적 성장 ⇨ 전문분야연구회 취지에 반하는 활동, 편법 중복가입 등 다양한 문제 표출

다. 종합대책 마련 필요 ⇨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의 시스템 점검 및 개선을 통한 사법부 전문성 강화 및 신뢰도 증진 기여방안

2. 연혁 및 현황 분석

■ 연구회 및 관련 규정 연혁 개관 ⇨ 2006년 예규개정 이후 사실상 방치

■ 예산 현황 ⇨ 최근 7년 이상 1억원 수준 동결

■ 최근의 개선방안 논의 : 2012. 기초실의 '전문분야연구회 운영방식 개선 검토' ⇨ 시행되지 않음

● 설립허가규정 폐지, 운영 관련 규정 전면 삭제, 상시 예산 지원 등

■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수 추이 및 예산 지원 현황

● 최근 수년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가파른 성장, 두 번째는 젠더법연구회 (2015년에는 노동법연구회도 회원 수 급증)

3. 현행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 ① 일부 연구분야 주제에 대한 법관 사회의 관심 消盡

- 의료법·언론법·기업법 등 회원수 감소·정체, 참여 저조 ⇨ 젊은 법관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 유도할 새로운 전문분야 발굴 필요

■ ② 중복가입 금지규정 形骸化

- 공정한 예산지원 등의 필요성에 따라 정한 원칙임. 하지만 사실상 커뮤니티 시삽 등에 의해 제한 없이 중복가입 허용되고 있음
-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중복가입 회원수도 단연 가장 많고(227명), 중복가입자 비율도 가장 높음(53%) ⇨ 핵심그룹의 적극적 포섭활동

■ ③ 한정된 예산 대비 연구회 다수로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 [현행배정방식] 예산의 50%만 활동성과 순위에 따라 배정
- [한계①] 1억원을 15개 연구회에 배분하는 결과 최대지원 1천만원, 최소지원 450만원으로 연구회 활동의 인센티브로서 효과 미흡
- [한계②] 제한된 범위의 형식적 평가로 행정처 관리범위 이탈
- 예산 및 전산망 지원에 상응하는 행정처의 실질적 관리방안 모색 필요

■ ④ 커뮤니티 폐쇄성 등으로 연구성과 사법부 내부 공유 미흡

- [사법부 전체] 비회원의 접근성 차단 + 지식광장에는 미계시
- [연구회 회원]도 비적극회원의 열독률 저조 ⇨ 재판실무 활용 등 기여도 높지 않고, 사법부 전체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 미흡

■ ⑤ 학계·재야·언론 등 상대 연구성과 활용 및 법원 신뢰강화 기능 미미

- 사법부 전문성 외부 각인 효과 부족, 법원 우호세력 확보 성과 미미, 성과물이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지도 아니함

■ ⑥ 허가받은 전문분야 이탈·무시

- [예1]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 논의영역도 이탈, 정치적 함의 포함된 주제 및 연사 다수



- [예2]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에 개입 ⇨ 핵심세력이 2015. 7. 발족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통하여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쟁점들에 조직적 관여 시도

4. 구조 개편 및 대응방안

가. 개선방안 요약 ⇨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별로 그에 상응하는 개선책 마련

나.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에 관한 구조 개편 등 개선방안

■ (법관 사회 관심 소진 ⇨) ①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 [필요성] 특정 연구회의 이슈 독점 방지, 자기개발 욕구 해소 및 합리적 여론형성의 장 마련
 - 일부 특정 집단이 논의를 주도하는 인사모와 '이사야' (인사제도 및 법원문화 관련 여론 주도)의 영향력이 비대해지기 전에 합리적 여론 분출의 장 마련 필요
- [기본방향] 젊은 법관들의 관심·수요·참여 고려, '주제' 못지않게 '주체'의 상징성 중요 ⇨ 젊은 법관들의 role model 前進 배치
- [후보 1] 사법국제화 연구회
 - ① 외국어·해외사법·국외연수에 관심 있는 법관 다수, ② '국제' 관련 이슈 포괄적으로 망라·포섭·유인 가능, ③ 우호적 분위기 형성시 각종 사법행정현안에 대하여 관련 자료 수집 및 지지 여론 출발점 역할 기대
 - [운영진 후보군] ① 이○○ 고법판사, ② 원○○ 지법부장 등
- [후보 2] 가칭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 연구회
 - 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속 사법부 및 법관의 모습 관련 쟁점 전반
 - ① 젊은 법관의 관심, ② 미디어 속 왜곡된 법관과 사법의 모습 바로잡는다는 명분이 공감대 형성, ③ 영화 및 방송 관련 이벤트로 관심 흡인력 극대화하여 단기간에 연구회 판도에 변화 유도 가능 등



- 세련된 명분 제시 중요

- [운영진 후보군] ① 문○○ 지법부장, ② 전○○ 고법판사 등

■ (중복가입 금지규정 形骸化 ⇨) ② **중복가입자 정리**

- [필요성] 원칙을 준수하는 법관만 여러 손해를 보고 있고, 편법적 중복가입의 혜택을 인권법연구회가 최대 향유하고 있음
- ① 법관들 상대 중복가입자 정리 명분 있고, ②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하며, ③ 인사모 해소를 위한 유효한 우회적 압박 카드이며, ④ 사전 준비의 부담 無 등의 여러 장점 있음
- 施行時 국제인권법(431⇨204), 노동법(295⇨196) 등이 가장 위축됨
- 중복가입자 정리과정에서 국제인권법으로 편중되는 부작용 방지 위해 고법부장급 탈퇴 등 다른 방안과 동시에 실시 필요

■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 ③ **예산 증액 및 실질 평가 시스템 구축**

- 예산동결 기간의 회원 및 성과 급증, 다른 부처 현황 등을 내세워 예산 당국 설득 ⇨ 증액에 따른 행정처의 예산분배 재량 확대로 연구 성과에 따른 실질적 차등지원 가능
- 평가기준 구체화·실질화하고 각급법원 전문분야 지원비(6억원)도 활용

■ (커뮤니티 폐쇄성 ⇨) ④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 ‘자신들만의 同質感’, ‘이너씨클 활동의 은밀한 滿足感’ 등 유발 ⇨ 학술성과 공유, 사법부 전체 역량 축적에 기여 필요
- [시행방안] ① 다른 전문분야 성과 접근성 강화, ②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물 사법부 전체 공유 등의 명분과 ③ 각종 성과물 지식광장 게재 독려 등 오해 해소 방안 동시 활용
- [기대효과] ① 사법부 전문역량 강화 및 지식공유 활성화, ② 중복가입금지 엄격 시행에 따른 불만 해소, ③ 은밀한 논의의 만족감 내



지 결속감 약화로 인적 유대 수단이 아닌 학술연구 수단으로 정립,
④ 인사모의 자유게시판化로 chilling effect 등 다양한 기대효과

■ (외부 활동 미흡 ⇨) ⑤ 외부 교류 및 우군 확보 적극 지원

- [시행방안 ①] 대형 이벤트 및 출판사업 발굴 및 지원
- [시행방안 ②] 매년 정기 평가시 외부 활동 관련 항목 대폭 강화
- [시행방안 ③] 사법부 우호 인사 확보를 위한 방안 등

■ (일부 연구회 활동 저조 ⇨) ⑥ 설립허가 취소 방안 : 소극

- 명분 약하고, 득보다 실이 큼

■ (행정처의 관리 강화 ⇨) ⑦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방안 : 소극

- 자율적 연구활동에 대한 탄압 논란, 행정처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부담 등이 큼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방안 검토

2018. 6. 5.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가.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점검 필요

▣ 2000년 관련 예규 제정 후 15년간 근본적 변화 없이 유지

- 2000년 당시 법관들의 관심도, 성과 활용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설된 후 큰 변화 없이 유지 ⇨ 특히 2006년 예규개정 이후로 사실상 방치
- 현행 체제는 법관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기에 미흡함

▣ 연구분야 주제는 물론 연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필요

- 변화하는 시대 환경 및 젊은 법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분야를 담당할 연구회 신설 및 지원 필요
- 휴면상태 연구회 폐쇄 여부, 중복가입 연구회 정리 여부 등 연구회 운영 시스템에 관하여도 재점검과 개선 필요

나. 특정 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

▣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이 회원 수 및 활동 외형에서 폭발적 성장

- 반면 연구회 취지에 배치되는 활동, 편법적 중복가입 등 다양한 문제점 표출 ⇨ 운영시스템 자체의 문제점 확인 및 보완책 마련 필요

다. 종합적 대책 검토 필요

▣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의 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전문연구 활성화 및 적정 활동 강화를 통해 사법부 전문성 강화, 외부의 신뢰 강화, 예산 증액 등 법원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

▣ 특정 연구회 과잉 성장 관련 政務的 대응방안 ⇨ 별도 보고



2. 연혁 및 현황 분석

▣ 연구회 및 관련 규정의 연혁 개관

- 2000. 7. 「전문분야연구회의구성및지원에관한예규」(이하 예규) 제정
- 2000. 8. 행정처장이 지정한 국제거래법연구회 등 11개 연구회로 시작
 - 사법정보화 연구회를 제외한 10개 연구회에 대하여는 중복가입 불허
- 2006. 2. 예규 개정으로 연구회 운영상 문제점 일부 개선
 - 연구회 설립을 ‘행정처장의 분야 지정’에서 ‘법관들의 자유설립’으로 전환, 단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장이 일정한 요건 하에 설립허가
 - 연구회의 운영성과에 관하여 행정처장 자문하기 위한 ‘연구회 성과 평가 위원회’ 신설함으로써 예산 배정의 객관성 확보
 - 전문재판부 소속 법관의 중복가입 허용 및 사법보좌관의 준회원 제도 도입
 - 연구회별로 간사의 허가를 받은 회원에 한하여 게시·열람권을 갖는 폐쇄 커뮤니티 신설 가능
- 2006. 11. 헌법연구회 신설 (중복가입 허용)
- 2007. 12. 젠더법 연구회 신설 (중복가입 허용)
- 2010. 7. 형사법연구회 신설 (중복가입 허용)
- 2010. 12. 예규 개정
 - 주요 활동이 11월과 12월에 집중됨을 고려하여 연구회의 활동성과 및 결산현황 보고시기를 매년 12. 1.에서 1. 15.로 변경
- 2011. 8. 국제인권법연구회 신설 ⇨ 현행 15개 연구회 체제 정립

▣ 예산 현황

- 2016년 예산 편성 ⇨ [210-12 복리후생비] 전문분야 실무연구회 지원비 7억 1천만 원



- 전문분야연구회 지원비로 1억 2백만 원 배정 (나머지 6억 8백만 원은 각급 법원 재판관련 전문분야 연구활동 지원비)
- 최근 7년 이상 연구회 지원비 1억 원 선에서 동결 (2012년 무렵까지는 위 지원비가 ‘전문분야 연구활동지원’ 약 6억 원과 ‘사이버연구회 활동지원’ 약 1억 원의 2가지 항목으로 편성되었던 영향도 있음)

■ 최근의 개선방안 논의

- 2012. 1. 기초실 ‘전문분야연구회 운영방식 개선 검토’ ⇨ 시행되지
는 아니함

☑ [주요 내용]

▶ 연구회 활동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 행정처장의 **설립허가규정 폐지**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문분야연구회가 아니어도 전산정보국장의 허가로 개설 가능)
- **운영방식에 관한 일체의 규정 삭제**(회원 자격, 가입 및 탈퇴, 임원진 구성, 총회 및 분과 등 관련 규정)
- **중복가입 금지 규정 삭제**

▶ 예산지원 관련 개선

- 연 1회 정기예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처장이 특정 연구회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 직권으로 상시 예산 지원 가능** (당시 사법정보화연구회가 법관의 SNS 사용기준에 관하여, 국제거래법연구회가 FTA에 관하여 각 연구 중 ⇨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주요 연구시 필요성 검토를 거쳐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활동지원비’에서 상시 지원)
-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 예산 배정 폐지** ⇨ **대다수인 중복가입회원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중복가입 전면 허용하면서 인원수 기준 삭제** (단 미중복 순수 회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만 예산지원 대상으로 함)
-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만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



▣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수 추이 및 예산 지원 현황

연구회	회장	시삽	회원 수						예산지원현황(평가순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년		2015년	
									순위	배정액	순위	배정액
국제거래법	노○○	홍○○	121	121	152	162	206	221	8	550만원	7	550만원
국제인권법	이○○	김○○	11. 8. 설립		108	217	285	431	4	700만원	4	700만원
기업법	김○○	김○○	180	199	198	197	207	214	15	450만원	13	450만원
노동법	김○○	김○○	155	165	171	179	200	295	8	550만원	10	550만원
도산법	이○○	이○○	264	288	324	364	402	449	5	650만원	7	650만원
민사집행법	김○○	이 ○	560	614	679	726	773	875	2	1천만원	1	1천만원
사법정보화	허○○	박○○	300	336	355	362	380	395	8	550만원	12	550만원
언론법	고○○	남○○	88	94	102	118	127	140	12	500만원	14	500만원
의료법	이○○	노○○	236	236	272	283	294	291	12	500만원	15	500만원
젠더법	민○○	김○○	389	397	433	628	651	691	3	950만원	1	950만원
조세법	김○○	이○○	176	186	213	222	238	257	5	650만원	6	650만원
지적재산권법	이○○	이○○	319	319	340	356	358	374	5	650만원	5	650만원
헌법	장○○	김○○	165	184	199	213	220	269	12	500만원	11	500만원
형사법	임○○	이○○	235	519	825	1,294	1,683	2,041	1	1250만원	3	1250만원
환경법	배○○	이○○	182	188	217	224	236	245	8	550만원	9	550만원
회원총수 및 총지원금			2,699	3,139	3,546	4,588	5,545	6,943		1억원		1억원

※ 노란색 음영은 중복 가입 가능 연구회

※ 민사집행법 연구회는 사법보좌관 등의 준회원 포함(법관은 635명)



3. 현행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 ① 일부 연구분야 주제에 대한 법관 사회의 관심 消盡

- [의료법연구회]의 경우 2015년 회원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의료법학회와 공동세미나를 1회 개최한 외에는 게시글이나 활동이 전혀 없었음
 - 회원의 오프라인 모임도 3년째 전혀 열리지 않고 있음
 - 서울중앙·서부·남부지법을 제외하고는 전담부 법관들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재판 자료 및 노하우 공유 기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언론법연구회]의 경우 2015년 정기총회(세미나)에 법관이 단 8명만 참석하였고, 커뮤니티 기타 대내외 활동이 침체되어 있음
- [기업법연구회]의 경우 2012, 2013년에는 회원수가 감소하는 등 최근 5년간 15명의 회원이 증가하는데 그쳤고, 현재도 커뮤니티 활동이 침체되어 있음
 - 단, 그 소모임인 법경제학모임이 정기세미나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이상의 연구회는 2015년 활동평가에서 차례로 최하위(15~13위)를 기록
- 반면 젠더법연구회, 지재법연구회 등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젊은 법관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만한 새로운 전문분야 발굴 긴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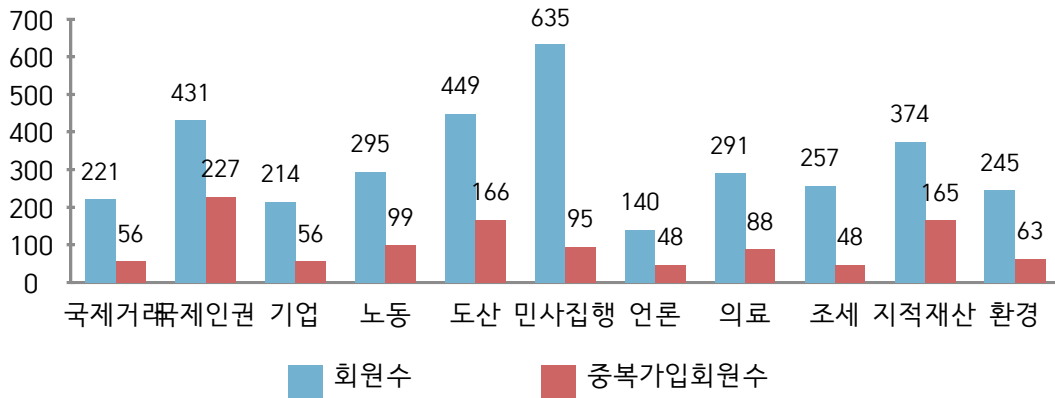
▣ ② 중복가입 금지 규정 形骸化

- 중복가입금지 규정은 ① 회원수를 고려한 공정한 예산지원, ② 허수의 회원 증대 방지, ③ 법관별로 주된 하나의 전문분야를 집중 육성할 필요성 등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정책결정한 원칙임
- 사실상 연구회 중복가입을 막을 방법이 없고, 통제가능한 코트넷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시삽이 임의로 가입을 허가하면 중복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복 가입 현황

연구회별 중복가입회원 수



※ ① 중복가입이 허용된 연구회 제외(민사집행법은 사법보좌관 제외), ② 1명이 여러 곳에 가입된 경우 그 중 가장 먼저 가입한 학회 외에는 중복가입된 것으로 계산

▣ ③ 한정된 예산 대비 연구회 다수로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 [현행 예산배정방식] 연 2회 지원액 배정

- 상반기 배정(예산액 50%)시는 전년도 활동성과를 평가한 순위에 따라 배정
- 하반기 배정시는 활동성과와 무관하게 예산 중 25%는 일률적으로 1/n 배정, 나머지 25%는 회원수에 따라 배정

● [한계①] 1억원의 예산을 15개의 연구회에 분산 배분

- 중복허용 연구회를 제외하면 최대지원액 1천만 원(민사집행법, 875명), 최소지원액 450만 원(기업법, 214명)으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차등 지원의 취지 미약 ⇨ 연구회 활동을 자극할 인센티브로서 기대효과 미흡

● [한계②] 제한된 범위의 형식적 평가로 행정처의 관리범위 이탈

- 예산 중 50~55%를 균등액 분할 또는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 기계적 배정
- 제한된 예산 중 45~50% 범위에서의 성과 평가(1~15위를 3개씩 5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50만원씩 차등)만으로는 실질적 평가의 동력이 부족함 ⇨ 평가위원인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도 중요 업무가 되기 어려움

● ⇨ 예산 및 전산망 지원에 상응하는 행정처의 실질적 관리방안 필요



▣ [4] 커뮤니티의 폐쇄성 등으로 연구성과 사법부 내부 공유 미흡

- [사법부 전체] 비회원은 대부분의 게시글을 볼 수 없음 + 일부 법관을 제외하고는 (커뮤니티 외) 지식광장에는 성과를 게시하지 않음
- [연구회 회원] 비적극 회원의 열독률 낮은 편임 + 커뮤니티 메일링 기능을 이용하지 않은 게시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함
- ⇨ 재판실무에의 활용을 위한 기여도 높지 않고, 사법부 전체의 전문성 향상에도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5] 학계, 재야 및 언론 등 상대 연구성과 활용을 통한 법원 신뢰 강화 기능 미미

- 법원행정처가 외부 활동 강조해온 결과 대부분의 연구회에서 외부 학회와의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2014년 미 실시 연구회 : 환경법, 도산법, 기업법 (단 기업법은 외부 연사가 절반을 차지하는 심포지엄 개최)
-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음
 - ①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나아가 사법부의 전문성을 외부에 각인시키는 효과 미흡함
 - ② 권위있는 외부 학회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및 소통을 통해 법원의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성과는 미미한 수준임
 - ③ 사법부 연구회의 출판물(정기, 비정기)이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물론 출판 예산의 제약 문제도 있음)

▣ [6] 허가받은 전문분야 이탈·무시

- 국제인권법연구회 2015년 정기세미나, 전문분야 연수 및 특강 개요

행사	주제	연사
1월 특강	경제민주화와 인권	정○○ 전 총리
3월 세미나	건강할 권리	김○○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5월 세미나	증세와 복지	새누리당 김○○ 의원



6월 법관연수	인권법과 법관	경향신문 이○○ 기자 등 (전○○ 대법관, 김○○ 헌법재판관)
7월 세미나	모욕죄의 남용과 한계	연구회 내 '표현의 자유' 소모임 소속 허○○, 류○○ 판사
8월 세미나	영화 빵과 장미	자유 토론
10월 특강	중동 내전과 난민 문제	경향신문 구○○ 기자
12월 학술대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한국노동법학회, 법원 노동법연구회와 공동개최

- '국제인권' 과 무관한 주제가 대부분 ⇨ 경제민주화와 인권, 증세와 복지 등은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의 논의 영역도 이탈하는 수준**임
- 정치적 함의를 포함한 주제를 자주 선정하다보니 연사로도 전·현직 정치인들이나 정치색이 있는 기자 등이 다수 참여하게 됨
- **인권과 전혀 무관한 '사법제도'에 관한 소모임 운영**
 - 연구회 핵심세력이 2015. 7.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을 발족하여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쟁점들을 인권을 명분으로 관여 시도**
 - 상고법원, 사법행정위원회, 판사회의의 활성화,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하여 조직적 개입 시도

4. 구조 개편 및 대응방안

☑ 개선방안 요약 ⇨ <전문분야연구회의 전반적 문제점>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기요인>별로 그에 상응하는 개선책 마련

- ▶ [전반적 문제점1] 법관 사회의 관심 소진 ⇨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 젊은 법관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중견 법관이 주도
- ▶ [문제점2] 중복 가입금지 규정 형해화 ⇨ 중복가입자 일제 정리(규범력 회복)
 - 국제인권법이 가장 큰 타격 + 주제 무관 소모임 정리 등 행정처 개입 명분 제공
- ▶ [문제점3] 형식적 평가 및 예산 배정 ⇨ 예산 증액 및 실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
- ▶ [문제점4] 커뮤니티 폐쇄성 ⇨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및 공유
 - 핵심세력 위축 및 인권법 회원들만의 이너써클 의식 희석 + 실무전문성 축적
- ▶ [문제점5] 외부 상대 성과 제시 미흡 ⇨ 외부 교류 및 우군 확보 적극 지원
 - 외부 교류를 예산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음
- ▶ 기타 ⇨ 활동 저조 연구회 폐쇄 여부,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여부 등



▣ 1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 필요성

- 인권의 보편성 등을 내세운 특정 연구회가 법관 사회의 이슈를 독점하는 현상 방지
- 시의성 있고 법관들이 관심있어 하는 주제에 대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법관들의 자기개발 욕구 해소는 물론 선후배 법관들의 바람직한 소통 창구 개설, 합리적 여론 형성의 장 마련

☑ 이슈별 법관여론 주도 온라인공간 분석

- ▶ ① 사법정책관련 이슈 ⇨ 국제인권법커뮤니티 중 인사모 소모임
 - ▶ ② 법관인사 및 법원문화(부장과의 관계 등) 관련 이슈 ⇨ 다음 익명카페 이사야
 - ▶ ③ 양성평등 관련 이슈 ⇨ 젠더법커뮤니티
 - ▶ ④ 모성보호 및 생활정보 관련 이슈 ⇨ 네이버 여성 법관 카페 유스티티아
- ⇨ 일부 특정 집단이 논의를 주도하는 '인사모'와 '이사야'의 영향력이 비대해지기 전에 법관들의 합리적 여론 분출의 장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커뮤니티 신설 필요

● 발굴의 기본방향

- 젊은 법관들의 관심 및 수요에 부합함과 동시에 다수 법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발굴 ⇨ 젊은 법관들의 전문분야 업무능력 및 의욕 고취, 업무 외적 관심의 다변화
- 전문분야의 '주제' 못지 않게 이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상징성 있는 선배법관 필요 ⇨ 젊은 법관들에게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법관들을 각 연구회에 분산 배치, 합리적 여론 형성의 구심점 역할 기대

● [새로운 연구회 후보 1] 사법국제화 연구회

- 각국 및 국제재판소의 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추후 연구회 인적 구성 및 활동상황 검토하여 '각국의 사법행정' 도 연구대상으로 확대
- 각종 사법현안에 대한 해외자료 수집, 번역 및 조사, 국내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번역, 해외 소개 및 홍보 ⇨ 현행 국제규범연구반을 확대개편하는 형태



- **[참가 유인]** 현재 국제규범연구반의 경우 장기해외연수를 준비하거나 외국어 실력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젊은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사법국제화연구회의 경우에도 설립 초기부터 행정처가 적극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젊은 법관 상당수의 관심을 끌 수 있음
- **[+]** ① 외국어 및 해외사법에 관심 많은 젊은 법관들 상당수 참여 가능, ② 국제인권법 회원 중 ‘국제’ 관련 분야에 관심 있어 가입하였던 법관을 유인할 수 있음, ③ 포괄적인 이슈를 연구 주제로 망라 가능, ④ (인적 구성과 성향이 행정처에 우호적인 경우) **각종 사법행정현안에 대하여 관련 자료 수집 및 방어논리 개발, 지지여론 확산의 출발점 역할 기대 가능**
- **[-]** ① 국제규범연구반 및 외국사법제도연구반과의 통폐합 내지 차별화 문제, ② 사법행정 현안이 연구대상이 되는 경우 연구 자율성 관련 오해의 소지 (‘관제 연구회’), ③ 인권법 핵심세력 등 외부 세력이 적극 참여할 가능성
- 운영진 후보군

이름	사진	소속	경력
이 ○ ○		○○고등 법원 고법판사	-해외사법관련 전문성 有, 행정처와의 의견조율 가능하고, 젊은 법관들과의 소통, 교류능력 있음
원 ○ ○		○○지방법원 부장판사	-해외사법관련 전문성 有, 행정처와의 의견조율 가능하고, 젊은 법관들과 소통, 교류 가능함

● **[새로운 연구회 후보 2] 가칭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 연구회**

- **[주된 분야]** ‘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속 사법부 및 법관의 모습’ 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및 파생되는 법적 문제, 나아가 미디어가 법관 및 재판의 현실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관련 콘텐츠의 개발방안을 각 연구
- **[+]** 젊은 법관들의 관심을 쉽게 유도할 수 있음(엔터테인먼트법 분야는 젊은 법관들이 관심을 갖는 전문분야 중 연구회 미개설된 몇 안 되는 분야 + 예산 지원을 통한 공연 관람, 예술인과의 간담회 등도 높은 호응 예상)



- **[+]** 미디어 속 왜곡된 법관과 사법의 모습을 바로잡는다는 **필요성과 명분이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법정드라마 대본 집필 등에 관심 있는 법관들의 수가 상당함 ⇨ **자발적으로 적극적 활동 유도 가능**
- **[+]** 주요 영화사·방송사·연예기획사 방문행사 등을 통해 법관 사회 화제의 중심에 서는 등으로 **단기간에 현행 연구회 판도에 가시적 변화** 유도 가능
- **[+]** 장기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법원에 대한 정확하고 우호적인 정보와 인식이 제공되기 위해서는(ex: 영화 ‘12 angry men’) 위와 같은 모임 필요함
- **[-]** 명분을 세련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풍 81’, ‘3S 정책’ 등과 같은 愚民化 정책으로 비판받으면서 행정처가 설립의 배후로 의심받을 위험 있음
- **[-]** 콘텐츠의 지속적·전문적 창출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흥미 위주의 단기 이벤트로 받아들여질 우려 있음
- ※ 전문분야 연구회로 설립하는 것이 부담될 경우 코트넷 커뮤니티로 개설할 수 있음(국제규범연구회, 부모교육공동연구회 커뮤니티 등이 그러함)
- 운영진 후보군

이름	사진	소속	경력
문 ○○ ○		○○지법 부장판사	-젊은 법관들 사이에 인기 및 신뢰도 높음 -2011년 친한 후배법관들을 데리고 SM을 방문하고 법정드라마 시나리오 고민하는 등 관련 분야 관심 ↑ - 어느 정도는 행정처와의 합리적 가교 역할 가능
전 ○○ ○		○○고등법원 고법판사	-행정처와의 의견조율 가능하고, 젊은 법관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가 받음
오 ○○ ○		○○고등법원 고법판사	-행정처 배후 지원 등의 오해 소지 없이 커뮤니티 운영가능



□ 2 중복가입자 정리

● 필요성

- ① 편법에 의한 연구회 중복가입이 난무하는 실정 ⇨ 원칙을 준수해 1개의 연구회에만 가입한 법관이 예산지원, 전문자료 접근, 전문성 있는 법관들과의 네트워크 기회 등 여러 측면에서 손해를 입게 되는 매우 부당한 결과 발생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 ② 편법적 중복가입의 혜택을 특정 연구회가 크게 누리고 있음 ⇨ 연구회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작업(중복가입자 정리)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특정 연구회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장점

▶ 1 [법관들 상대로 명분 있음]

- 법관들의 학술조직인 전문분야연구회의 활동 및 구성에 대하여 행정처가 관여할 경우 법관들의 자율성 침해, 학문의 자유 억압 등의 논란을 피할 수 없음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경우 ① 중복가입금지규정의 규범력 회복, ②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③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법관들의 피해 방지 등의 명분 있음 ⇨ 규범 준수 및 편법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을 중시하는 법관들의 성향상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음

▶ 2 [행정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임]

- 수백명 가입법관의 연구회 활동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방안(활동계획 사전 승인, 사후 평가 강화, 특정 연구회에 대한 제재 등)의 경우 그 성격상 행정처장 또는 차장의 공지 내지 사전 안내가 필요할 수 있음
- 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연구회 성과 평가 위원회(위원장 기조실장)'의 '심의 강화'를 개선수단으로 삼는 경우에도 유사한 논란의 소지 있음
- 중복가입금지 해소방안의 경우 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공지 및 시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나 저항 없음 ⇨ 그 시행방안에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에 대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다른 방안에 비하여 낮음

▶ 3 [‘인사모’ 해소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임]

- ‘인사모’는 조속히 해소 내지 와해시킬 필요성이 큼
- 그러나, 행정처가 ‘모든 연구회는 전문분야와 무관한 소모임 활동을 정리하라’는 식으로 정공법을 택할 경우 인사모를 표적으로 한 조치임이 쉽게 드러나고 강한 반발을 초래할 우려 있음



- 중복회원 해소방안은 다소 기술적인 커뮤니티 정비방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전정국장이 현행 규정에 위배되는 중복회원 해소방안을 공지하면서 그 밖의 커뮤니티 관련 규정 역시 소개하고 이에 위반하는 활동을 자제하여 달라고 안내**한다면 법관 사회 반발이나 인사모측의 반발 명분을 최소화할 수 있음

▶ ④ 별다른 사전 준비 작업 없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즉시 시행할 수 있음

-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를 위하여 어느 정도 유예기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공지와 동시에 직권으로 정리할 것인지 여부 정도만 결정하면 됨

● 시행에 따른 특정 연구회 회원 감소

- 한명의 법관이 가입한 여러 연구회 중 가입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중복가입으로 탈퇴처리할 경우 연구회 회원 수 변동 내역

	현재 가입회원 수	중복가입 탈퇴처리 후 회원 수
국제거래법	221	165
국제인권법	431	204
기업법	214	158
노동법	295	196
도산법	449	283
민사집행법	875	780
언론법	140	92
의료법	291	203
조세법	257	209
지적재산권법	374	209
환경법	245	182

※ 청색표시는 가입회원이 90명 이상 감소하는 연구회

● 부작용 검토

- 중복가입 연구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법관들이 다른 연구회에서 탈퇴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선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중복가입자 정리가 오히려 소장 법관들의 인권법으로의 편중 현상 촉발할 가능성
- 중복가입 정리 외에 아래에서 검토할 ‘부장급 이상 대거 탈퇴 방안’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의 연구범위 명확화 및 인사모 해소 시도 방안’ 등과 함께 시행될 경우 법관들에게 **인권법연구회가 논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줄 것이므로, 다수의 법관들이 인권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함



▣ ③ 예산 증액 및 실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

- [필요성] 전문분야연구회 지원예산이 장기간 1억원으로 동결 ⇨ 15개에 달하는 연구회에 대하여 나눠먹기식 분배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평가작업이 어려움
 - 실질적으로도 외부 학술기관과의 공동세미나 등과 같은 외부활동은 현재의 예산 지원 수준으로는 시행하기 곤란하므로, 외부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 증액이 필요함
 - 예산 증액으로 법원행정처의 예산분배 재량범위가 커질수록 연구실적에 따른 실질적 차등지원이 가능해짐 ⇨ 연구회 활동에 대하여 기계적·형식적 평가가 아닌 실질적 평가여건 조성
- 예산증액을 위한 예산당국 설득 방안
 - 예산이 동결된 기간 동안의 연구회 수 및 가입회원 수 급증, 누적된 연구성과 등을 내세워 예산당국 설득
 - 법무부의 전문분야 연구 지원 관련 예산 등 타부처 예산 상황도 확인하여 증액의 논거로 삼을 필요 있음
- 사안에 따라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활동 지원비(약 6억 원)를 활용할 필요 있음
 - 기존의 헌법연구회가 법관 사회의 인권 관련 연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대규모 행사 개최하는 경우 예산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있음
- 실질적 평가 기준 강화
 - 현행 평가기준표(아래 ‘외부 활동 강화’ 항목 참조)의 평가항목과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필요 있음

▣ ④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 필요성
 - 커뮤니티 게시글이 대부분 회원 전용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법부 전체 차



원의 전문역량 축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학술연구단체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공개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인권법 커뮤니티 등의 경우 일부 회원의 사조직적 운영행태와 게시글 비공개가 맞물려 회원들에게 ‘자신들만의 동질감’ 내지 ‘일반 법관들은 알지 못하는 이너써클에서 활동한다는 은밀한 만족감’ 등을 유발하고 있음

● 시행방안

- 커뮤니티 총괄관리자인 전정국장이 언제든지 공지를 통해 시행할 수 있음
- ① ‘법관들이 자신이 가입한 커뮤니티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의 연구성과에도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법관님들의 전문성 강화와 자율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거나
- ② ‘사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이상 그 연구성과를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함으로써 사법부 전체의 전문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는 정도의 명분을 제시할 수 있음
- ③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반드시 지식광장에 게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압박’ 이라는 일각의 의심을 희석시키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이 부분은 전정국장이 아니라 각 법원 수석부장 등이 담당)

● [기대효과]

- ① 학술성과 공유로 사법부 전문역량 강화,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 코트넷 지식공유 활동 활성화
- ② 다른 커뮤니티에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중복가입금지 규정의 엄정한 시행에 따른 불만 내지 부작용 완화
- ③ 인권법커뮤니티 및 노동법커뮤니티 등 인적 유대관계 강화의 수단으로 커뮤니티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연구회의 경우 게시글 내용 공개를 통해 자신들이 ‘은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 내지 결속감’ 을 약화시켜 활동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킬 수 있음



- ④ 특히 인사모의 경우 내부논의가 사법부 전체에 전면 공개됨으로써 인사모 내부의 논의가 코트넷 자유게시판 또는 제도개선법관토론방에서의 논의와 차별화되지 않게 됨 ⇨ **‘인사모의 자유게시판화’를 통해 과감하고 도발적인 논의는 위축될 가능성** 있음
- ⑤ 커뮤니티 내부 논의 내용 공개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용이해짐 (심의관 등이 의심을 감수하며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할 필요 없음)

● 부작용 검토

- 게시글 공개시 인사모 등의 편향적 논의는 또 다른 폐쇄공간을 찾아 네이버 밴드 또는 다음 카페 등으로 도피할 가능성 큼
- 2015. 5. 우리법연구회의 상고법원 관련 세미나 사례에서 보듯 법원의 공식 연구회 내지 코트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① 훨씬 언론의 주목을 피할 수 있고, ② 공개되어 문제되는 경우에도 **‘특정 성향 일부 법관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방어 논리** 활용 가능함

● 폐쇄 커뮤니티와의 관계

- 폐쇄 커뮤니티 근거 규정 자체를 없앨 필요는 없음
- 인사모의 경우 폐쇄 커뮤니티로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 커뮤니티 내부에서 비판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연구회장이 ‘인권을 위한 사법제도를 논의한다면서 일반회원의 접근을 막는 폐쇄적 밀실 논의의 부당함’을 지적함으로써 다른 일반 회원들의 지지를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5 연구회 외부 활동 강화

● 필요성

- 15년간 축적된 연구성과 및 역량을 대외 관계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
- 반면 일부 연구회가 매너리즘에 빠져 새로운 주제 발굴 및 연구활동이 침체된 상황에서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자극을 받을 필요도 있음
- 사법부 위상 강화 및 영향력 확대, 사법부 우군 확보와도 연결되는 과제임

● [시행방안 ①] ‘대형 이벤트’ 발굴 및 지원

☑ 필요성

- ▶ 현재와 같이 고만고만한 수준의 연구활동 및 외부 공동세미나 정도로는 전문 역량 과시를 통한 사법부 위상 강화의 전기를 마련하기 어려움
- ▶ 해당 전문분야에서 **법원 전문분야연구회의 역량이 확실히 부각될 수 있는 대형 이벤트나 대형 출판사업**을 기획·실시할 필요 있음

☑ 시행방안

▶ **대형 이벤트**

- 특별세미나 외에도 **모의재판, 국제회의(ex: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국제난민컨퍼런스), 경연대회** 등 형식의 제약 없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할 필요 있음

▶ **대형 출판사업**

- **해당 분야에서 바이블로 남을 수 있는 최고수준의 서적**, 실무와 학계의 논의를 집대성한 서적, **최첨단 분야에 대한 선도적 문헌**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특별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연구회 예산(1억 원)이 아닌 각급 법원 전문분야 지원예산 기타 다른 항목에서의 **충실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행정처장이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별 사업별로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 있음**(2012년 기초실 검토서의 '상시지원' 방안 유사 제도 도입, 단 수많은 신청이 제출될 것에 대비하여 요건, 시기 및 가용예산범위 등에 관하여 **별도 상세 검토 필요**)

▶ **대법원 국제 법률 심포지엄** 활용 방안

- 매년 국제 심포지엄 예산(약 1억 7천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전년도 또는 **최근 활동이 가장 우수한 연구회 또는 가장 탁월한 심포지엄 계획서를 제출한 연구회에게 해당 연도의 국제 심포지엄 준비를 맡기는 방안도 가능**(행정처가 행사 실무지원을 하고, 대법원 주최 심포지엄으로서의 골격은 유지함)

● [시행방안 ②] 매년 정기 평가시 외부 활동 관련 항목 대폭 강화

- 현재 평가기준상 외부 활동에 대하여는 특별한 배점이 없음
- 커뮤니티의 내부 게시글 및 참여도에 대한 기본 배점이 65점에 달함
- 외부 단체와의 공동세미나 등의 외부행사를 공식 평가항목의 가점사항으로 명시하는 등의 개선 필요



현행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기준		배점(100)
게시물 평가	토론장 및 자료실에 게시된 글과 논문 등에 대한 평가		30
	세부기준	게시물 주제의 연구 필요성	7
		게시물 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7
		게시물의 완성도	8
		실무와의 관련성, 실무에 대한 기여도	8
회원 참여도	게시물 및 게시자의 수, 조회수 등을 고려한 참여도 평가		30
	세부기준	게시물의 수 (절대 숫자)	10
		글을 게시한 회원 수 / 전체 회원 수	10
		게시물에 대한 조회수	10
세미나	세미나 개최여부 및 그 내용, 성과 등에 대한 평가		20
	세부기준	오프라인 세미나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	8
		세미나 구성의 적절성	5
		세미나 성과물의 수준	7
기타 (사이트운영,예 산등)	자료집 등 연구성과물 산출 여부,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 연구회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 등 기타사항 평가		20
	세부기준	코트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메뉴 구성,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의 적절성	5
		자료집 등 연구성과물의 발행 여부 및 수준	5
		내년 연구회 운영계획의 적정성	5
		전년 예산 집행의 적정성	5

● [시행방안 ③] 사법부 우호 인사 확보를 위한 방안

- 매년 각 연구회별로 연구회와 관계가 돈독하거나 연구회 활동에 특별히 기여한 학자 내지 저명인사를 1명씩 추천받아 법원행정처장 주최 만찬에 초청하고 공로패를 수여하는 방안 등(원로급 석학들로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만찬도 고려 가능)
-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사법부와 유대관계 강화 효과

● 단, 외부 영향력 확대 방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심층 추가 분석·검토 필요

▣ ⑥ 관심 및 활동 저조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방안 검토

- 관련 규정 ⇨ ① 연구회는 폐쇄 규정 없고, 설립허가 취소 가능, ②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정국장 또는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폐쇄 가능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2조(연구회의 설립허가)

③ 제2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 ⇨ **반대해석상 설립허가 취소 가능**

☑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0조(커뮤니티의 폐쇄)

③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운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직권으로 커뮤니티를 폐쇄**할 수 있다.

④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당해 커뮤니티 회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게시물의 이전 또는 삭제, 커뮤니티의 폐쇄, 커뮤니티 운영자 변경, 코트넷 이용권한 제한을 비롯한 코트넷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이 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관리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커뮤니티 폐쇄, 운영자 변경 또는 커뮤니티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되더라도 바로 해당 커뮤니티가 폐쇄된다고 보기 어려움

● **시행 타당성 검토 ⇨ 명분 약하고,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소극**

- ① **설립목적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가능 ⇨ 법관 사회의 강력한 반발 예상 + **취소권자인 행정처장님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부담있으므로 극히 신중할 필요(예산 제한 등을 통한 간접적 압박 검토)
- ② **1년 이상 활동하지 않는 커뮤니티** ⇨ 직권 폐쇄 가능하나, 사전 의견진술 과정에서 **향후 적극 활동 재개 의사를 밝힐 경우 신중할 필요**
- ③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는 커뮤니티** 등 ⇨ 코트넷 운영위원회에서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 조치 가능하나,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할 필요 (**행정처의 불통·권위적·관료적 이미지 악화**, 이를 경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신중 검토 필요)



■ 7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방안 검토

- 연구회 및 커뮤니티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활동계획을 보고하게 한 뒤 승인 또는 수정요구 등 회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있음
- 검토 의견 ⇨ 소극
 - 법관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에 대한 계획 승인 또는 수정요구 등은 그 자체로 조심스럽고,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 및 탄압 논란을 피할 수 없음
 - 법원행정처가 그로 인한 논란을 정면으로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 부담이 크고, 수정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 보도 가능성도 농후함
 - 행정처(결국 대법원장님, 처장님) vs 인권법연구회 또는 진보 법관세력의 대결구도가 설정될 위험성이 매우 높음. [끝]

중복가입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 말씀

존경하는 전국의 법관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이○○입니다.

중복가입된 전문분야연구회의 탈퇴와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공지 글을 올립니다.

법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문분야연구회는 재판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재판업무의 충실화, 효율화,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법관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2000년도에 창설되었고, 법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아래 표와 같이 15개의 연구회가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복 가입 불가	중복 가입 가능
국제거래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기업법연구회 노동법연구회, 도산법연구회, 민사집행법연구회 언론법연구회, 의료법연구회, 조세법연구회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환경법연구회 ※ 단, 현재 소속 중인 전문재판부와 관련된 전문분야연구회는 중복가입 가능	사법정보화연구회 젠더법연구회 헌법연구회 형사법연구회

전문분야연구회 가입과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한편 경비보조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연구회 창설 초기부터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에 근거하여 전문분야연구회의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사법정보화연구회, 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형사법연구회와 현재 소속 중인 전문재판부와 관련된 전문분야연구회는 예외) 현재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가입하신 분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번거로우시겠지만, 연구회에 복수로 가입되어 있으신 법관 여러분께서는 2017. 2. 20.까지 가장 관심 있는 분야 하나를 선택하시고 나머지 연구회에서는 탈퇴하심으로써 중복가입금지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2004년에도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는 절차가 시행된 바 있었습니다). 다만, 사법정보화연구회, 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형사법연구회와 현재 소속 중인 전문재판부와 관련된 전문분야연구회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방법에 관하여는 첨부해 드리는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20. 이후에도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규의 취지에 따라 가장 먼저 가입하셨던 연구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그 뒤에 가입하신 연구회에서는 탈퇴하시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할 계획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복가입을 금지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법부의 귀중한 자산인 전문분야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사법부 전체의 전문 역량 강화를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는 법관이라면 누구나 모든 전문분야연구회의 자료 등을 자유롭게 읽고,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이○○ 올림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 역할분담

- 구조 개편 방안 ⇨ 박○○, 조○○, 임○○
- 취합, 정리, 보고서 초안 작성 ⇨ 박○○
- 수정 ⇨ 김○○

1. 검토 배경 ⇨ 박○○

▣ 전문분야연구회의 현 구조가 만들어진지 15년 이상 경과

- 2000년 8월경 “전문분야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정
 - 2개 이상 연구회 중복 가입 금지 원칙
- 현 구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15년 전 당시 법관들의 전문법률분야 관심도, 연구수요, 연구성과,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설 연구회의 종류를 결정한 것이 현행 체제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음
 - 현행 체제는 큰 폭으로 변화한 법관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미흡
 - 현재가 ‘첨단 IT 산업’ 시대라면, 일부 커뮤니티의 연구주제는 ‘산업혁명’ 시대의 주제에 불과

▣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필요성

- 연구회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음 ⇨ 구조조정 필요
- 변화하는 시대 환경 및 젊은 법관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회 신설
 - 경제·사회와 시대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쟁 유형 발생, 젊은 법관들

의 관심도, 연구 수요 변화 및 재판실무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연구회 개설 필요

- 법관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휴면 상태의 연구회 폐쇄
 - 운영 현황 점검 결과 신규 법관 가입이 미약하고, 활동 성과도 미비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 사실상 휴면 상태에 있는 연구회는 폐쇄할 필요 있음

▣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주제 독점 및 과잉 성장에 대한 점검 필요

- ‘국제’, ‘인권’이라는 주제 포섭 범위의 보편성, 포괄성으로 인해 다른 연구회보다 관심 쟁점을 선점하는 현상 발생 ⇨ 사실상 새로운 모든 주제를 다루면서, 연구회 내부에 각종 소모임 설립
- 일반 법관 사회와 차별화된 자유롭고 편안한 조직 문화 ⇨ 젊은 법관들의 선호도 상승 및 가입 증가
- 이른바 핵심 그룹의 ‘거점’ 내지는 ‘활동 무대’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활용되고 있는 現實

2. 현황 ⇨ 박○○

▣ 전문분야연구회 현황, 예산 배정

- 특히 젊은 법관 등 신규 법관 가입이 증가하는 연구회의 종류 및 그 원인 파악

3. 구조 개편 방안

▣ 연구회 활동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강화 ⇨ 박○○

- 활동 성과, 회원 현황, 결산 현황,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활동 계획, 소요 예산 검토를 통한 현황 파악 및 감독

▣ 예산지원 ⇨ 박○○

- 사법행정 목표 및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성과를 내는 연구회에 차별적,

집중적으로 예산 지원

- ▣ 법관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떨어지는 연구회 폐쇄 ⇨ 임○○
- ▣ 연구회 중복 가입 기준 점검 ⇨ 임○○
- ▣ 젊은 법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회 발굴 및 신설 ⇨ 조○○
 - 국제 인권법연구회의 이슈 독점 현상 타개
 -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국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슈를 독점하는 현상 타개
- ▣ 롤모델 역할을 할 존경받고 신망받는 선배 법관들의 영입 및 재배치 ⇨ 조○○
 - 젊은 법관들을 이끌 수 있는 롤모델 역할을 할 리더급 선배 법관들을 각 연구회에 분산 배치 <끝>

전문분야연구회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계획 등에 대한 안내 말씀

존경하는 전국의 법관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지난 2. 13. 전산정보관리국장이 “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공지한 후 귀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판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문분야연구회가 2000년에 창설된 이래 중복가입은 예규에 근거하여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구회 임원진 등이 커뮤니티에 회원을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전산상 권한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연구회에 중복가입한 판사님들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산정보관리국장이 지난 2. 13.자 공지에서 안내해 드린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조치는 현행 예규의 범위 내에서 연구회 활동의 충실 도모, 경비 보조 등 각종 지원의 객관성 및 형평성 담보, 연구성과의 공유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많은 검토 끝에 도출된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판사님들께서 현행 예규의 개정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에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번 기회에 판사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전문분야연구회의 근본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문분야연구회는 2000년 창설 당시 법관들의 연구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구회의 종류, 조직 등이 결정된 뒤 약 17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근본적인 변화 없이 기존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문분야 연구에 대한 새로운 수요와 법관 사회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새 틀을 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법관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회의 적정한 개수, ②연구성과의 활용도 증대, ③학계와의 교류 강화, ④전문분야연구회(15개)와 커뮤니티(119개)의 구별 기준 정립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전문분야연구회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회 회장, 간사 등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 법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판사님들의 제안이 있으면 사법행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전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산정보관리국장이 안내해 드린 중복가입 해소 방안(2017. 3. 6. 이후에도 중복가입된 경우 뒤에 가입한 연구회를 탈퇴하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은 그 시행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판사님들의 충지를 모으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전문분야연구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법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 임○○ 올림



송○○ 판사 건의문 검토

2016. 2. 2.

기획조정실

1. 송○○ 판사 건의문 게시 경과

(사진)	<p>송○○ (34기) 19○○. ○. ○○.</p> <p>※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p>	<p>1991 ○○ ○○고 졸업 2003 ○○대 ○○○과 졸업(○○학번) 2005 ○○○○지법 판사 2007 ○○○○지법 판사 2009 ○○지법 판사 2012 ○○지원 판사 2015 ○○○○지법 판사 2016. 2. 중견법관 해외연수 예정(○○○대학)</p>
------	--	--

■ 송○○ 판사의 특징

-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리더
- 인사모 등 각종 소모임을 결성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現 활동 방식은 송○○ 판사가 우리법연구회에서 구축한 활동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임

■ 1. 29.(금)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

- 발표: 송○○ 판사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
- 참석: 사○○, 이○○, 정○○, 이○○ 부장판사, 김○○, 박○○, 홍○○, 이○○, 이○○, 김○○, 이○○, 신○○, 진○○, 류○○, 홍○○ 판사
- [밑줄 표시] 우리법연구회 前, 現 회원(이하 같음)

■ 건의문 게시 경과

- [2. 1. 13:40경] 위 발표문을 국제인권법연구회 자료실에 게시
- 2. 1. 자정 기준 댓글 3개 (이○○, 유○○ 부장판사, 박○○ 판사)
☞ 호응 크지 않음



- [2. 1. 17:00경]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을 위 발표문과 함께 자유게시판 중 **제도개선법관토론방에 게시**
- 2. 1. 자정 기준 댓글 1개 (홍○○ 판사), 조회수 121 ☞ **호응 크지 않음**

■ **건의문을 게시한 이유**

- 1. 29.(금) 인사모 토론회에서 건의문 게시를 집단적으로 결의한 사실은 없음 ☞ 발제, 토론의 통상적인 세미나를 하고 해산
- 평소 사법행정, 판사회의 활성화에 관심이 많던 송○○ 판사가 개인적으로 건의문을 게시한 것으로 보임

2. 건의문의 내용 검토

☑ **건의문 내용 요약**

①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에 대한 판사회의 선출 필요**

- 위원의 2/3 또는 적어도 과반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해야 함

② **각 위원회를 총괄하는 전체회의를 만들어야 함**

③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판사회의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각급 법원 판사회의의 내규 개정 필요

가. 개별 검토

①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에 대한 판사회의 선출 필요**

■ **법원행정처 확정안의 내용**

- ① 법원행정처가 심급·권역·직급별 대표성 반영하여 권역별로 배정 ☞ ② 권역별로 고등법원장이 위원 추천 ☞ ③ 법원행정처장이 위원 위촉
- 각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지원’, ‘추천’, ‘선출’ 등 다양한 구성방식을 적절하게 혼합
- 오피니언 리더, 사법행정 관심 법관 포함

■ 검토의견

- 논란 가능성이 높은 예민한 문제
- 건의사항(과반수 이상 판사회의 선출방식) VS 법원행정처 안(권역별 고등법원장 추천방식)

② 각 위원회를 총괄하는 전체회의를 만들어야 함

■ 법원행정처 확정안의 내용

- 상임위원회 모델만 도입 ☞ 연방사법회의 모델 도입은 시기상조
 - [논거] 전체회의의 의결기구화 우려 존재, 전국법원장회의와의 관계 모호
- 법원문화개선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만 도입하고, 연방사법회의 모델 도입 여부는 향후 상임위원회 모델의 성과 분석 후 정책 결정
- 단, 각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은 모두 모여서 함께하고, 보고안건의 경우 위원회 통합 보고 실시 ☞ 보고안건의 경우 ‘전체회의’ 구성한 것과 유사한 효과 (단, 심의, 의결은 불가)

■ 검토의견

- 송○○ 판사의 이 부분 건의 사항은 채택 불가
- 다만, 상임위원회 위원 전체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하고, 보고안건에 대한 전체 위원회 통합보고를 실시하므로, 비록 전체회의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위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긍심을 줄 수는 있음

③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논의

■ 법원행정처 확정안의 내용

- 자유롭고 심도 있는 논의 촉진을 위하여 회의는 비공개
-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 가능



■ 검토의견

- 사법행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해야 함
 - 다만,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음
- 송○○ 판사의 이 부분 건의사항은 확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송판사는 ‘판사회의’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보임

나. 총평

■ 송○○ 판사의 건의문은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임

- 이미 TF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임
- 법원행정처 확정안과 크게 다르지도 않음
- 다만, 송○○ 판사의 주된 관심은 ‘사법행정위원회의 활성화’보다는 ‘판사회의의 활성화’에 있음 ☞ 사법행정위원회를 판사회의 활성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임

☑ 송○○ 판사의 주된 관심

▶ [목적]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 ⇨ “**판사회의라는 회의체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으로 전환

▶ [수단] ① 각급 법원에서의 판사회의 활성화, ② 미국연방사법회의와 유사한 전국 단위의 전체판사회의 결성 및 활성화

■ 건의문은 판사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판사회의 활성화 주장은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 ⇨ 진부함
- 게시일 자정 기준 조회수 121회, 댓글 1개에 불과
- 우리법연구회 회원을 제외하고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

■ 다만, 송판사가 인사모에서 발제한 발표문은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을

답고 있음

● 송○○ 판사의 주장

- [헌법 정신] 헌법상 법관 독립의 원칙은 ‘**법관의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규정 ⇨ **수직적 사법행정체계**는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음
- [법원조직법의 개정 필요성]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관료적 사법행정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은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되어야 함** ⇨ 단, 현실적으로 개정은 쉽지 않음
- [무엇을 할 것인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판사회의의 활성화 및 사실상 의결기구화를 통하여 수직적, 관료적 사법행정체계를 수평적, 민주적 법원운영방식으로 바꾸어야 함 ⇨ 사법행정위원회를 판사회의의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 <끝>



사법행정위원회 안건제출 활성화 관련 보고

2016. 4. 5.

통합실무지원단

1. 검토 배경

▣ 2016. 4. 1. 각 고등법원장의 위원 후보자 추천 완료

- 특정 성향의 법관 상당수 참여
- 이에 반해 다수 법관의 의사를 대변할 위원은 소수
- ⇒ 특정 성향 법관이 논의를 주도할 우려

▣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 저하

- 특정 성향의 법관이 ① 무리한 안건 제출하면서 ② 논의 주도할 경우
- ⇒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① 법관의 의견대립의 장 내지 ② 특정 성향 법관의 주장 발표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 존재

▣ 현재 까지 제출된 안건 : 1건 (법원문화개선위원회)

● “합의부 재판부가 ‘합의부’답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1. ○○지법 류○○ 판사 제안 안건)

- ▷ 합의부 구성 초기에 합의부 구성원들 사이에 대등하게 협의하는 것이 필요
- ▷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 이루어지고, 배석들의 재판 참여 자유로워야 함
- ▷ 재판장의 과외 활동에 배석판사가 자동으로 간사 등으로 배치되는 것 부적절
- ▷ 구성원 판사들의 사적 시간 존중 필요

▣ 안건제출 활성화를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 vs. 예측가능성 확보

- 안건 제출기간(~4.12.) 내 추가 안건제출 가능성 없음 ⇒ 안건제출 활성화 화조치 필요
- 한편 안건제출 활성화 시도시 예측불가능성 증대 우려



- **안건제출 활성화 방안 재검토 필요**

2. 기존의 안건제출 활성화 방안

- ▣ 제출기간 연장 (4. 11.까지 ⇒ 4. 20.까지)
- ▣ 위원을 통한 안건 제출 독려 / 위원들 상대로 안건 수집 임무 부여
- ▣ 위촉식 행사 중 간담회 시간 연장, 안건에 관한 토의 권장
- ▣ 비공개, 비실명 안건 제출 기능 마련

3. 내부에서 검토 중인 안건

- ▣ 별지1 안건 목록 참조

4. 검토 사항

- ▣ **안건제출 활성화 방안 추진 여부**
 - 1안 : 별도 방안 시도 없음
 - 2안 : 안건제출 활성화 방안 전부/일부 시도
- ▣ **통합실무지원단 의견 : 1안**
 - 사상 첫 시도 ⇒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코트넷 전용공간을 통한 안건 제안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안건 제출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프레임 설정 가능
 - ▣ 만일 제출기간을 연장한 결과 예민한 성격의 안건이 제안된 경우 갈등 상황을 우려하여 이를 불채택하고, 행정처 주도로 내부 검토안건을 논의안건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 우려
 - ▣ 예정된 기간(4. 12.) 종료 ⇒ 1주일 후인 4. 18.경 다양한 경로로 일선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의 필요성과 시급성, 적시성과 중요도, 법관들의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안건이라고 대외적으로 소개하면서 통합실무지원단에서 준비한 안건 중 위원회에서 첩예한 논쟁과 충



둘 가능성이 낮은 안건을 논의 안건으로 결정

- 일선법관들과 논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주제를 선정하다면 내부적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사항

- 위원회 구성 후 위원들에게 차장님 명의의 축하 메일을 보내면서 별도로 안건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 차장님 명의 메일 초안 : 별지2 참조 <끝>



(별지1)

◎ 법원문화발전위원회 준비 안건

- 법관 사회의 소통 강화방안
- 바람직한 합의부 운영방안
- 적절한 연가 활용을 위한 업무관행 개선방안
- 스마트워크 등을 위한 법원 업무용 가상PC 활용방안
- 직급별 역할 적정화 방안

◎ 재판제도개선위원회 준비 안건

- 법정 중심의 구술심리 실천방안
- 재판부 내 업무 재설계 및 참여관 역할강화 방안
- 민사사건 사물관할 기준 재조정 방안
-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방안



(별지2)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먼저 우리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신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판사님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법원장께서 관내 법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평소 법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다른 판사님을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는 시도로서, 사법행정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막중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이 사법행정위원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로이 출범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그 과정에서 결정된 정책이 추진 동력을 얻어 잘 실현됨으로써, 법관들의 삶, 나아가 국민들의 삶이 보다 개선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4. 6.

법원행정처 차장 임○○ 올림



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

2016. 4. 8.

통합실무지원단

1. 검토 방향

가. 현재 상황 : 향후 위원회 운영의 **정확한 예측불가능**

▣ 사법부 역사상 **첫 번째 행사**

- 사법부 역사상 처음 시도된 일선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행사로서 그 진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 불가능**

▣ **위원회 구성의 문제**

- **특정 성향의 법관 상당수** 참여 vs 다수 법관의 의사 대변할 법관 **상대적 소수**
- 위기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안건을 결정·회부하더라도 **실제 의견수렴 및 회의 과정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 존재**

나.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 검토 시 유의점

▣ **예측가능성의 최대한 확보**

- 사전에 예측 가능한 적정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적의 안정적 안건**을 결정·회부
- **주도면밀한 회의자료 준비**를 통해 실제 회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 사전 차단 필요**

▣ **위기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

- 결정·회부 안건에 대하여 **제시될 수 있는 모든 의견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갈등 위기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이 연
착륙할 수 있도록 사전 정지작업 필요

▣ **위원의 역할 명확화**

- 무절제한 자기 의견 주장 < **법관들의 의견 폭넓은 수렴 및 전달**

2. 향후 진행일정

가. 위촉식 행사 (4. 11.)

▣ **돌발 위험 요소 최소화**

- 위원회 구성경과 및 사법행정 현안 보고 시 생방송 X
- 위원회별 간담회 시간 감축(종래 1시간 20분 예상 ⇒ 1시간 이하)

▣ **위원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각인**

- 위원의 역할은 2주의 의견수렴 기간(4. 18. ~ 4. 29.) 동안 결정된 안건에 대한 **일선 법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
- 즉, **결정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리의 주체가 위원임을** 명확히 각인시킬 필요

나. 안건 제출기간 종료 (~4. 12.)

다. 내부검토 및 안건 결정 (4. 13. ~ 4. 15.)

▣ **일선 법관이 제출한 안건 우선 검토**

- 현재 법원문화개선위원회에 제출된 안건(합의부 운영의 적정화)은 내부 검토된 안건과 일치하므로 채택 가능함
- 재판제도발전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재판연구관 보고서 검색)은 채택하기에 부적절함 (제안자 본인도 철회를 희망하였음)



▣ **법관 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안건 적극 채택**

라. 결정 안건에 관한 보고서 작성 (4. 16. ~ 4. 17.)

▣ **결정 안건에 대한 보고서 작성할 주무 심의관 확정**

▣ **위원회별 보고서 작성방식 차별화 필요**

- **법원문화발전위원회** : 소관 사항상 민감하거나 예민한 안건 결정 가능성 높음 → 결정 안건에 대한 행정처 내부 검토내용 공개 시 일선 법관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 야기 가능성 있음 → 결정 안건 당 2~3페이지 정도의 간략한 쟁점 위주 보고서 작성 적극 검토
- **재판제도개선위원회** : 소관 사항상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고 법관 누구나 솔직하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안건 결정 가능성 높음 → 결정 안건에 대한 행정처 내부 검토내용 공개하더라도 일선 법관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 야기 가능성 거의 없음 → 각 결정 안건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 동안의 관련 연구 성과를 요약하고 의견수렴 및 실제 회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분석·정리하는 정도의 상세한 보고서 작성 적극 검토

마. 결정·회부 안건 공지 (4. 18.)

▣ **주요 공지사항에 처장님 명의 결정·회부 안건 안내글 게시**

- 안내글 게시 시 **안건의 결정·회부 이유 설명** 필요
 - 행정처에서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 일선 법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논의의 필요성, 시급성, 적시성 및 중요도, 일선 법관들의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건을 결정·회부하였다는 점 적극 공지할 필요
- ▣ **일선 법관에게 결정·회부 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출 요청**
 - 결정·회부 안건에 관한 처장님(또는 차장님) 명의의 안내글에는 간략하



계만 언급하고, **각 위원장 명의의 코트넷 전용공간 게시글**에 상세하게 언급

바. 회부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4. 18. ~ 4. 29.)

▣ 위원회에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서 제공 및 의견수렴 부탁

- 코트넷 전용공간을 통한 온라인 의견수렴 및 위원 각자의 오프라인 의견수렴 병행

▣ 안건별(또는 쟁점별) 주무위원 선정 적극 고려

- 4. 11. 위원회별 간담회 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충실성 등을 위해 회부 안건별로 수렴된 의견에 대한 정리업무를 담당할 주무위원 선정 적극 검토 요청

▣ 회부 안건에 대한 위원회별 내부 논의 활성화를 위해 코트넷 커뮤니티 오픈

▣ 행정처에 대한 자료제출, 법관 상대 설문조사 등 요구는 위원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 또는 불합리한 요구 사전 방지 장치 마련 필요

▣ 주무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취합·정리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제출

사. 통합실무지원단에 의견수렴 결과제출 (4. 29.까지)

▣ 각 위원장이 회부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취합·정리하여 통합실무지원단에 제출

- 명분 : 일선 법관들의 의견 전달 + 실질적 회의를 위한 회의자료 마련
- 효과 : 무분별한 자기의견 위주 회의 지양 / 다양한 의견수렴

▣ 의견수렴 결과제출이 다소 지연될 우려 있음



- 제출 마감시한을 4. 29.로 정하더라도 그 다음 주인 5. 2.이나 5. 3. 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아. 통합실무지원단 회의자료 작성 (4. 30. ~ 5. 10.)

▣ 회의자료 작성에 충분한 시간 필요

-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수렴 취합·정리 결과 철저 분석 ⇒ 실제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의견, 주장들을 정리하여 대비책 마련 필요 (리스크 최소화)
- 충분히 검토한 후 기존 연구자료 등을 참작하여 회의자료 작성

▣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및 대응방안 검토 필요

-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통해 실제 회의의 논의방향, 결론 등에 대한 예측(건의안의 수용가능성 등) 및 그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회의의 논의방향, 결론 등이 수용 불가능한 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위원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정리하는 노력을 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

자. 위원회에 회의자료 제공 (5. 11. ~ 5. 15.)

▣ 5. 11. 위원회에 회의자료 제공

▣ 5. 11. ~ 5. 15. 위원 각자 회의자료 검토

- 위원장 통해 회의자료 수정·보완 요청 시 통합실무지원단 검토 후 반영

차. 1차 회의 개최 (5. 16.)

▣ 개최기간 : 1일

- 1일 vs 2일



- 검토 : 1일

- 가급적 회의 전에 코트넷 커뮤니티를 통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게 하고, 실제 회의는 주요 쟁점에 대한 토의 위주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개최일자 : 5. 16.(월)

- 5. 9.(월) 개최 →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여 리스크 관리가 곤란할 우려 있음
- 5. 12.(목) 또는 5. 13.(금) 개최 → 회의자료 준비 등의 기간을 단축할 경우 검토 가능하나, 목·금요일은 재판기일이 많은 요일인데다가 그 전주 목요일(5. 5. 어린이날)과 금요일(5. 6. 샌드위치 휴가 가능성)에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위원들 참석 어려움 예상

카. 회의자료 및 회의 내용 공개 여부

- 회의자료 및 회의 내용의 공개 여부는 **위원회 의결사항임**

- 공개 여부 및 범위 ☞ **위원회별로 달리 정할 필요**

- **법원문화발전위원회** : 민감·예민한 안건 회부 가능성 높음 → 회의자료 및 회의 내용 **전부 공개 시 일선 법관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 야기 가능성 있음** → **회의자료 및 회의 내용 공개 범위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필요시 위원장이나 신뢰 가능한 일부 위원에게 그러한 취지를 적절히 전달하는 방안 적극 고려)
- **재판제도개선위원회** : 민감·예민한 안건 회부 가능성 높지 않음 → 회의자료 및 회의 내용 **전부 공개하더라도 일선 법관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 야기 가능성 거의 없음** → **회의자료 및 회의 내용 원칙적 전부 공개할 필요**

- **공개 방법**



-
- 위원회별 코트넷 전용공간에 게시
 - 이와 별도로 1차 회의 직후 주요 공지사항에 기초실장님 명의로 위원회별 건의안 기타 의결 내용 요지를 정리한 안내글 게시

제목: 이사야...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

1. 새뱃돈 사건

네이버에 소위 중산층 이상 사는 엄마들이 정말 거리낌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시판이 있어요. 남의 눈, 귀 의식하지 않고 쇼핑, 육아, 시월드 문제에 관해 노골적인 수다를 나누는데, 특히 그 정보력이 엄청나서 중독성이 대단하답니다.

근데 그런 노골적인 수다가 가능한 원동력은 바로 엄격한 회원제 비공개 카페라는 점이에요. 기존 회원의 초대와 시삽의 승인을 통해서만 게시판 접근이 가능한데, 흠... 우리랑 많이 닮았죠? 암튼 그런 공간 속에서 맘들은 남편 욕, 시어머니 욕도 후련하게들 쏟아내는 표현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설 연휴에 맘들을 발각 뒤집어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기사를 보신 판사님들도 계실 텐데요. 카페 게시판에 어떤 맘이 올린 속풀이 글이 '새뱃돈 차액 돌려달라는 시댁 형님'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거예요. (<http://issueviewer.tistory.com/449>)

게시판은 발각 뒤집혔죠. 아니, 우리끼리 속풀자고 한 얘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떡하냐...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집 사람들은 알 텐데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냐... 대체 누구냐, 색출해서 쫓아내자 등등... 하지만 유출 경로는 추측만 난무할 뿐이었어요. 사실 유출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저도 기사화되었으니 옮기는 거지만, 맘만 먹으면 우리 카페에 그 글을 퍼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맘들은 '핑'을 해요. 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2. 법복 입은 가면무도회

탐 크루즈가 나온 '아이스 와이드 셋'이란 영화 아시죠? 유명한 가면무도회 장면이 있어요. 좀 야한!... 저는 요새 그 이미지가 종종 떠올라요. 우리 이 카페에서 가면무도회를 즐기고 있는 거죠. 서로 누구인지 모르는 채 속이야기를 편히 풀어놓죠.

근데 최근의 이 모 부장님 상황을 보면서 전 그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즐기는 무도회는 아이스 와이드 셋에서처럼 밀폐된 저택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우리 뺨 뚫린 들판에서 또는 대로 옆 공원에서, 가면은 썼으되 법복을 입고 우리 신분은 노출시킨 채라는 것을...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타이틀을 단 게시판 아래에서는 우리는 판사로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당장 보세요. 조선일보 기자가 저희 게시판 주위를 킁킁거리고 있어요. 우리 이 공간이 밀폐된 방음시설이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유리박스 같은 곳이에요. 인터넷에서 '익명'이란 건, 사실 ISP들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면 심한 표현일까요? 여기 들어올 때 로그인 안 하셨어요? 요샌 '로그인 유지' 기능 때문에 점점 무감각해져요. 심지어 기자들이 '귀대기'까지 시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전관예우가 어떻고, 이 모 부장님이 어떻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려고요.

유스티티아도 있지 않나구요? 거긴 달라요. 거긴 실명을 걸고 활동해요. 그래서 책임감이 남다르죠. 소곤소곤 기능이 있어봤자, 여차피 서로 실명을 걸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나온 이야기는 일부 익명글이라도 '다함께 책임'이란 생각이 있어요. 거기선 최소한 동료였던 이○○ 전 부장님 호칭을 '이 사무장'으로 하니 마니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올 거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러려고 익명인 걸까요?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가면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사단이 나도 다치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법복을 입고 있으니깐 ‘판사’는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럼 여기 모인 우리들 때문에 또 우리 동료, 선후배들이 팬시리 욕을 먹고. 그럼 그 분들은 우리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할 거예요. 밥조에서 시침 똑 떼고 있으면 그만이겠지만, 그냥 그래도 될까요?

우리가 탄 뗏목은 그냥 뗏목이 아니고, 사실은, 사실은요. ‘판사호’라고 버젓이 쓰여진 뗏목이에요. 그건 기자들이 이미 알고 세상이 아는 일이 되어있어요. 그냥 뗏목 갈아타고 말 일일까요?

3. ‘소 잃으면 외양간 버리자’ 대신에 우리도 평?

지난번에 민감 정보에 관해서 우리 카페가 내린 결론은 ‘우리 양식을 믿자,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게시판을 닫자’였어요. 고상한 결론이긴 했지만 달리 표현하면 ‘소 잃으면 외양간 버리자’뿐이에요. 고칠 수도 없고 버려야 한다니요. 너무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언급한 맘들 카페에선 ‘평’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연연찌라시 올리고 나서 주로 하던 건데, 이제는 보편화되었어요. 뭐냐면 좀 민감한 글은 글을 올리면서 올리는 사람이 ‘이 글은 몇 분 후에 평합니다’라고 예고해요. 그럼 그 한정된 시간동안만 다양한 댓글, 의견을 주고받고, 약속된 시간이 되면 글쓴이가 글을 자삭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욕, 19금 이야기, 연엔스캔들 이야기도 그래서 가능해요.

우리도 스스로 보기에 ‘판사가 이러이러한 글을 올렸다’라고 기사가 난다면 뭐하다 싶은 글은 평하기로 하는 게 어떨까요. 꼭 이 게시판에 우리 생각들을 축적시켜 놓을 필욘 없잖아요. 나중에 추억삼아 볼 일도 없고.

글구 운영진도 스스로 평하지 않는 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주세요. 전 제가 이 공간의 일원으로 명하니 있다가 팬시리 동료들한테 미안해지는 상황은 싫습니다.

다들 한 번 생각해주세요. 이런 글 ‘운영건의’ 게시판이 맞지만, 거긴 아무도 안 들여다볼 거 같고. 우리 카페 유지하려면 지금처럼은 어려울 거 같아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 같아요. T.T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1. 개요

▣ 2015. 2. 27., 3. 1.의 2회에 걸쳐 게시판 운영에 관한 제안 글 게시

- 민감 사안 글은 단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할 것을 제안

● 현재 조회 수

- 전체 회원 수 388명
- 2015. 2. 27. 게시 글 ⇨ 조회 수 291회
- 2015. 3. 1. 게시 글 ⇨ 조회 수 162회

▣ 제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임

- 취지에 공감하는 내용이 대부분임

- 구체적 내용은 아래에 첨부

2. 구체적 반응

▣ 2015. 2. 27. 제안 글에 대한 반응

- 댓글 1 ⇨ 관심 표명[15.02.27. 08:26]

- 문체에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다음 글 꼭 이어서 써주세요~~

- 댓글 2 ⇨ 공감[15.02.27. 14:27]

- 글 쓴 분의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준다는....

- 댓글 3 ⇨ 공감[15.02.27. 19:16]

- 법관들이라 이 정도는 지킬 소양이 있을 거 같아요.

- 댓글 4 ⇨ 공감[15.02.28. 05:52]

- 아 저도 이 사건 알아요. 보면서 이사야 떠올린 것도 똑같네요. 정보의 축



적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유로운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는 떠가기 금지 복사 금지 평 활용 등이 적극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 2015. 3. 1. 제안 글에 대한 반응

● 댓글 1 ⇨ 공감[15.03.01. 03:52]

- 좋은 고민 글 감사합니다. 원글님의 이사에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네요. 저도 유사시 외양간 버리기가 불가피하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소중한 공간을 지킬 수 있는 대책 강구에 머리를 굴리게 되는군요.
- 유스랑 다르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일단 유스는 사직해도 회원 자격이 유지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만, 실명 활동으로 이미 친분이 있는 터라 그런 것 같아요. 한편 평 문화는 유스에도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평할 권리는 당연한 글쓴이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설령 댓글이 달려 있어도 말입니다. 다만 운영진에게 평 권한을 주는 것은, 운영진이나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하네요.
- 운영진에게 삭제, 검열 권한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이사에 운영진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을 듯합니다만.
- 반대로 글을 삭제할 '의무'가 운영진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 회원들이 댓글로 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다면 그때 운영진이 최종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 원글님께서 급한 대로 평문화부터 제안하신 것 같고, 저도 당장 다른 수는 안 떠오르는데, 다른 아이디어도 궁금합니다.
- 아무래도 남성 회원들이 기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익명이기까지 한 이곳이 유스보다 좀 더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걱정은, 제 근거 없는 편견의 발로이기를 바랍니다...

● 댓글 2 ⇨ 공감[15.03.01. 11:33]

- 글 쓰신 분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유스는 사직 시 회원 등급이 조정



되어서 일부 게시판 글은 접근이 불가능해진다고 해요.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보다 아이들 키우는 얘기, 아주머니 얘기가 많으니 감사하게도 외부의 관심이 덜하겠지만요.

● 댓글 3 ⇨ 관심 표명[15.03.01. 21:34]

- 유스티티아는 뭔가요?;;;

● 댓글 4 ⇨ 공감[15.03.02. 00:44]

-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여기에 쓰시는 글들 모두 기자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코트넷에 쓴 게시물이 왜 등록되자마자 바로 언론 보도가 되겠나요. 언론인을 가족으로 둔 법원 직원, 법관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카페의 존재도, 이 카페에 올려진 글들도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을 것이고, 다만 그 취재 과정의 윤리성에 관한 비난 가능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도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댓글 5 ⇨ 공감[15.03.02. 07:33]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사들의 양식을 민자..라는 건 지나치게 나이브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3. 향후 계획

▣ **오늘과 내일 중으로 본격적인 게시 글 열람이 이루어질 것임**

● 통상적으로 평일 낮 시간에도 접속이 상당히 빈번함

▣ **좀 더 구체적인 논의 내지 논쟁이 있을 것임** ⇨ 추이를 예의 주시하여야 함

● 논의·논쟁의 방향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임. 끝.



제목: 이사야...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

1. 새뱃돈 사건 ⇨ 2015. 2. 27. 게시 글

네이버에 소위 중산층 이상 사는 엄마들이 정말 거리낌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시판이 있어요. 남의 눈, 귀 의식하지 않고 쇼핑, 육아, 시월드 문제에 관해 노골적인 수다를 나누는데, 특히 그 정보력이 엄청나서 중독성이 대단하답니다.

근데 그런 노골적인 수다가 가능한 원동력은 바로 엄격한 회원제 비공개 카페라는 점이에요. 기존 회원의 초대와 시삽의 승인을 통해서만 게시판 접근이 가능한데, 흠... 우리랑 많이 닮았죠? 암튼 그런 공간 속에서 맘들은 남편 욕, 시어머니 욕도 후련하게들 쏟아내는 표현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설 연휴에 맘들을 발각 뒤집어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기사를 보신 판사님들도 계실 텐데요. 카페 게시판에 어떤 맘이 올린 속풀이 글이 '새뱃돈 차액 돌려달라는 시댁 형님'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거예요.(<http://issueviewer.tistory.com/449>)

게시판은 발각 뒤집혔죠. 아니, 우리끼리 속풀자고 한 얘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떡하냐...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집 사람들은 알 텐데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냐... 대체 누구냐, 색출해서 쫓아내자 등등... 하지만 유출 경로는 추측만 난무할 뿐이었어요. 사실 유출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저도 기사화되었으니 옹기는 거지만, 맘만 먹으면 우리 카페에 그 글을 퍼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맘들은 '핑'을 해요. 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2. 법복 입은 가면무도회 ⇨ 2015. 3. 1. 게시 글

탐 크루즈가 나온 '아이스 와이드 셋'이란 영화 아시죠? 유명한 가면무도회 장면이 있어요. 좀 야한!... 저는 요새 그 이미지가 종종 떠올라요. 우린 이 카페에서 가면무도회를 즐기고 있는 거죠. 서로 누구인지 모르는 채 속이야기를 편히 풀어놓죠.

근데 최근의 이 모 부장님 상황을 보면서 전 그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즐기는 무도회는 아이스 와이드 셋에서처럼 밀폐된 저택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우린 뺨 뚫린 들판에서 또는 대로 옆 공원에서, 가면은 썼으되 법복을 입고 우리 신분은 노출시킨 채라는 것을...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타이틀을 단 게시판 아래에서는 우리는 판사로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당장 보세요. 조선일보 기자가 저희 게시판 주위를 킁킁거리고 있어요. 우린 이 공간이 밀폐된 방음시설이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유리박스 같은 곳이에요. 인터넷에서 '익명'이란 건, 사실 ISP들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면 심한 표현일까요? 여기 들어올 때 로그인 안 하셨어요? 요새 '로그인 유지' 기능 때문에 점점 무감각해져요. 심지어 기자들이 '귀대기'까지 시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전관예우가 어떻고, 이 모 부장님이 어떻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려고요.

유스티티아도 있지 않냐구요? 거긴 달라요. 거긴 실명을 걸고 활동해요. 그래서 책임감이 남다르죠. 소곤소곤 기능이 있어봤자, 어차피 서로 실명을 걸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나온 이야기는 일부 익명글이라도 '다함께 책임'이란 생각이 있어요. 거기선 최소한 동료였던 이○○ 전 부장님 호칭을 '이 사무장'으로 하니 마니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올 거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러려고 익명인 걸까요?

같은 이야기인데, 우린 가면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사단이 나도 다치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법복을 입고 있으니까 '판사'는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럼 여기 모인 우리들 때문에 또 우리 동



료, 선후배들이 팬시리 욕을 먹고. 그럼 그 분들은 우리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할 거예요. 밥조에서 시침 똑 떼고 있으면 그만이겠지만, 그냥 그래도 될까요?

우리가 탄 뗏목은 그냥 뗏목이 아니고, 사실은, 사실은요. ‘판사호’라고 버젓이 쓰여진 뗏목이에요. 그건 기자들이 이미 알고 세상이 아는 일이 되어있어요. 그냥 뗏목 갈아타고 말 일일까요?

3. ‘소 잃으면 외양간 버리자’ 대신에 우리도 평? ⇨ 2015. 3. 1. 게시 글

지난번에 민감 정보에 관해서 우리 카페가 내린 결론은 ‘우리 양식을 믿자,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게시판을 닫자’였어요. 고상한 결론이긴 했지만 달리 표현하면 ‘소 잃으면 외양간 버리자’뿐이에요. 고칠 수도 없고 버려야 한다니요. 너무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언급한 맘들 카페에선 ‘평’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연애피라시 올리고 나서 주로 하던 건데, 이제는 보편화되었어요. 뭐냐면 좀 민감한 글은 글을 올리면서 올리는 사람이 ‘이 글은 몇 분 후에 평합니다’라고 예고해요. 그럼 그 한정된 시간동안만 다양한 댓글, 의견을 주고받고, 약속된 시간이 되면 글쓴이가 글을 자삭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욕, 19금 이야기, 연애헤럴 이야기도 그래서 가능해요.

우리도 스스로 보기에 ‘판사가 이러이러한 글을 올렸다’라고 기사가 난다면 뭐하다 싶은 글은 평하기로 하는 게 어떨까요. 꼭 이 게시판에 우리 생각들을 축적시켜 놓을 필은 없잖아요. 나중에 추억삼아 볼 일도 없고.

글구 운영진도 스스로 평하지 않는 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주세요. 전 제가 이 공간의 일원으로 멍하니 있다가 팬시리 동료들한테 미안해지는 상황은 싫습니다.

다들 한 번 생각해주세요. 이런 글 ‘운영건의’ 게시판이 맞지만, 거긴 아무도 안 들여다볼 거 같고. 우리 카페 유지하려면 지금처럼은 어려울 거 같아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거 같아요. T.T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1. 개요

- 2015. 2. 27., 3. 1.의 2회에 걸쳐 게시판 운영에 관한 제안 글 게시
 - 민감 사안 글은 단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할 것을 제안
 - 현재 조회 수[3. 3. 07:00 기준]
 - 전체 회원 수 388명
 - 2015. 2. 27. 게시 글 ⇨ 조회 수 317회
 - 2015. 3. 1. 게시 글 ⇨ 조회 수 282회
- 제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임
 - 취지에 공감하는 내용이 대부분임
- 자진 삭제를 예정한 게시 글이 게재되기 시작함
 - 회원들에게 제안이 이미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임

2. 구체적 반응

- 2015. 2. 27. 제안 글에 대한 반응
 - 댓글 1 ⇨ 관심 표명[15.02.27. 08:26]
 - 문체에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다음 글 꼭 이어서 써주세요~^^
 - 댓글 2 ⇨ 공감[15.02.27. 14:27]
 - 글 쓴 분의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준다는....
 - 댓글 3 ⇨ 공감[15.02.27. 19:16]
 - 법관들이라 이 정도는 지킬 소양이 있을 거 같아요.
 - 댓글 4 ⇨ 공감[15.02.28. 05:52]



- 아 저도 이 사건 알아요. 보면서 이사야 떠올린 것도 똑같네요. 정보의 축적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유로운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는 떠가기 금지 복사 금지 평 활용 등이 적극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 2015. 3. 1. 제안 글에 대한 반응

● 댓글 1 ⇨ 공감[15.03.01. 03:52]

- 좋은 고민 글 감사합니다. 원글님의 이사야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네요. 저도 유사시 외양간 버리기가 불가피하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소중한 공간을 지킬 수 있는 대책 강구에 머리를 굴리게 되는군요.
- 유스랑 다르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일단 유스는 사직해도 회원 자격이 유지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만, 실명 활동으로 이미 친분이 있는 터라 그런 것 같아요. 한편 평 문화는 유스에도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평할 권리는 당연한 글쓴이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실령 댓글이 달려 있어도 말입니다. 다만 운영진에게 평 권한을 주는 것은, 운영진이나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하네요.
- 운영진에게 삭제, 검열 권한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이사야 운영진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을 듯합니다만.
- 반대로 글을 삭제할 '의무'가 운영진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 회원들이 댓글로 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다면 그때 운영진이 최종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 원글님께서 급한 대로 평문화부터 제안하신 것 같고, 저도 당장 다른 수는 안 떠오르는데, 다른 아이디어도 궁금합니다.
- 아무래도 남성 회원들이 기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익명이기까지 한 이곳이 유스보다 좀 더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걱정은, 제 근거 없는 편견의 발로이기를 바랍니다...

● 댓글 2 ⇨ 공감[15.03.01. 11:33]



- 글 쓰신 분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유스는 사직 시 회원 등급이 조정되어서 일부 게시판 글은 접근이 불가능해진다고 해요.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보다 아이들 키우는 얘기, 아주머니 얘기가 많으니 감사하게도 외부의 관심이 덜하겠지만요.

- 댓글 3 ⇨ 관심 표명[15.03.01. 21:34]

- 유스티티아는 뭔가요?;;;

- 댓글 4 ⇨ 공감[15.03.02. 00:44]

-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여기에 쓰시는 글들 모두 기자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코트넷에 쓴 게시물들이 왜 등록되자마자 바로 언론 보도가 되겠나요. 언론인을 가족으로 둔 법원 직원, 법관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카페의 존재도, 이 카페에 올려진 글들도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을 것이고, 다만 그 취재 과정의 윤리성에 관한 비난 가능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도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댓글 5 ⇨ 공감[15.03.02. 07:33]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사들의 양식을 믿자..라는 건 지나치게 나이브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 **자진 삭제를 예정한 게시 글 [2015.03.02. 14:10]**

- 제목

- 도대체 언제부터

- 본문

- 합의부 부장이 기록 안 보는 게 당연한 게 되었나?

- (조만간 평 예정)

- 댓글 1 [15.03.02. 14:46]

- 평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요?^^아울러 심심한 위로를....



- 댓글 2 [15.03.02. 15:56]
 - 평 안 해도 될까요? 혹시 유출되어 판사들 근무태만 취지로 언론에 보도 될까요.
- 댓글 3 [15.03.02. 15:37]
 - 경력상향재판부가 들어서면서, 배석들 중 고참 배석들이 많아지면서, 기대치가 높아지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부장님들이 기록을 안 보시는 건 그분들 스스로도 마땅한 변명거리가 없을 거 같아요.
- 댓글 4 [15.03.02. 16:02]
 - 진행까지 저보고 챙기라니 제가 고등배석인지 지방배석인지 헷갈립니다. 그럴 거면 결론도 제 맘대로 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싫으시다네요.

3. 향후 계획

- ▣ **오늘 중으로 게시 글에 대한 열람과 구체적인 논의·논쟁이 이어질 것임** ⇨ 추이를 **예의 주시**하여야 함
 - 논의·논쟁의 **방향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임
- ▣ **한편, 제안 글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될 것으로 보임**
 - **적극적** 목표 ⇨ 민감한 글에 대한 **자진 삭제 문화 정착**
 - **소극적** 목표 ⇨ 게시 글의 **유출 가능성에 관하여 자각**하고 지나치게 민감한 사안에 대한 **무분별한 글 작성 자제 분위기 조성**. 끝.

인터넷 익명게시판 추가 대응방안 검토

2015. 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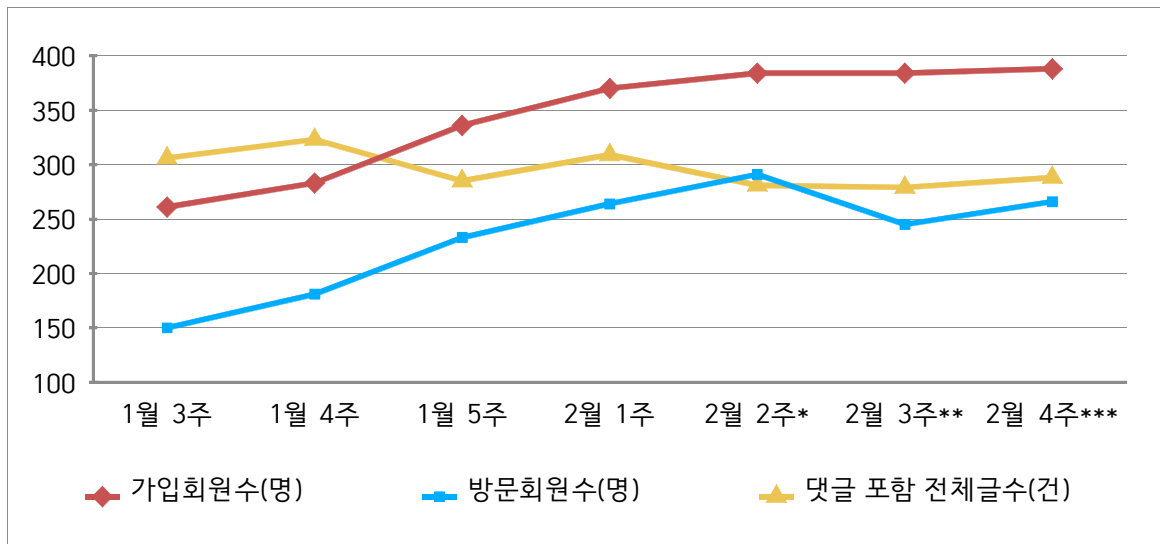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2015. 3. 11. 개최 예정 ⇨ 익명 활동을 포함한 법관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권고의견 의결 예상
- 권고의견 의결을 전후한 추가 대응방안 모색 ⇨ 시기와 내용면에서 권고의견과 결합하여 효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 검토
- ①익명 카페 활동의 양적, 질적 변화와 민감 게시글 삭제에 관한 내부 논의를 살펴본 후, ②정무적인 관점에서 대응방안 검토함

2. 카페 활동 추이

- 2월 둘째주*(2. 12. 이 모 부장사건 언론보도) 전후 활동 量的 분석



** (2월 3주) 2. 22. 이 모 전 판사, 기자가 위 카페 존부를 자신에게 문의하였음을 공개

*** (2월 4주) 2. 23. 처장님, 법관에 대한 당부말씀 코트넷 공지 및 전체 메일

**** (3월 1주) 3. 1. 카페 회원, 민감 내용 게시글에 대한 삭제 방안 권유글 게시



- 매주 30명까지 증가하던 가입자 수 ⇨ 4주간 3명 증가
- 8명의 운영자 중 1명 2. 21. 사임
- 설연휴 및 인사이드(2월 3주) 이후에도 활동 반등 조짐 없음

▣ 전후 활동 質的 분석 ⇨ 민감한 내용의 본글 및 댓글 추출

	카페 전체 총페이지뷰	민감 본글 (댓글)수	주제
1월 3주	1,302	7(50)	대법관 제청, 기업인 가석방, 검찰비판
1월 4주	2,010	4(57)	땅콩회항, 판사구속, 상고법원
1월 5주	3,209	5(58)	전관예우, 법원내 세대간 갈등, 상고법원
2월 1주	4,245	8(106)	신○○ 대법관 퇴임, 대법관 제청, 부의 세습, 상고법원
2월 2주 (이○○ 부장사건 보도)	3,137	4(36)	원세훈 사건, 대법관 제청, 검찰비판, 언론과재벌
2월 3주 (기자 취재 시도 공개)	642	0	
2월 4주 (처장님 당부사항 공지)	1,160	0	
3월 1주 (민감글 삭제 내부제안)	통계미제공	1(9)	김영란법(전문 별지1 첨부) 부장 기록 미검토 글 1건 삭제

- 2월 3주 이후 민감한 글 사실상 없음
 - 2. 12. 이 모 부장 사태 직후에는 여전히 '검찰 출신 대법관', '재벌2세'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룬 글이 일부 있었으나, 2. 22. 기자 취재 시도 사실 공개 이후로는 2주가 지나도록 김영란법에 관한 1건 뿐임
 - 순수 업무 관련 노하우 공유 및 질문 글이 13건(댓글 70개)으로 다수이고, 일상생활 관련글이 나머지를 이룸

▣ 유출가능성에 대한 내부 제안 및 논의 결과

- 1차 논의 요약(이 모 부장 사태 전인 1. 30.경)
 - 가입 법관 1인이 '외부유출시 문제소지가 큰 게시글에 대해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



- 토론이 이루어졌으나, 다수 회원이 '동료법관을 믿자, 문제되면 그 때 폐쇄하자'는 정도의 안일한 입장을 보임
- 운영자도 '동료법관의 글의 내용까지 관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공지함
- 이 모 부장 사태 직후
 - 카페 게시글도 위험한 것 아니냐, 근무시간에 글을 올리기 부담스럽다 는 등의 염려 댓글
 - 2차 논의(처장님 공지글 게시 후인 2. 27.~3. 4. 댓글전문 별지2 첨부)
 - 가입 법관 1인이 '민감 사안에 관한 글은 단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하는 것이 결국 카페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제안
 - 위 글에 동의하면서 '평(자진 삭제) 문화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거나 '가입한 판사들의 양식을 믿자....는 건 지나치게 나이브한 생각이다'는 입장이 8명 정도
 - 위 글에 반대하면서 '법관 스스로의 자정과 검열을 거친 끝에 올라오는 글인 만큼 언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돼도 상관없다'거나 '판사의 본분에 어긋날 정도는 거를 수 있는 양식을 갖추었고,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글은 도태될 것이므로 굳이 노출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5명 정도
 - 운영진은 3. 4. '취지는 공감하나 운영자의 임의삭제는 위법하고 회원들의 견해가 다양할 수 있어 운영방침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중전 입장 고수함
 - 일부 글 자진 삭제 예고 및 삭제
 - 2차 논의 직후인 3. 2. 한 법관이 '도대체 언제부터 합의부장이 기록 안 보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냐'는 비판글을 올리면서 스스로 '조만간 평(삭제)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혔고, 위 합의부장 비판글에 동의하는 댓글 및 자진 삭제에 관한 찬반 댓글 후 자진 삭제
 - 중전에도 게시글이 논란을 일으키자 사후에 스스로 삭제한 예가 드물게 있었으나, 글을 올릴 때부터 스스로 삭제를 예고하고 시행한 것은 처음임



3. 대응방안 검토

▣ 착안점 및 고려사항

● 대응방안의 두 가지 목표

- 카페 게시글의 유출로 인하여 사법부의 신뢰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① 소극적으로는 민감한 사안에 관한 무분별한 글의 게시를 방지하여야 하고, ② 적극적으로는 작성된 글의 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 소극적 목적 상당 부분 달성 ⇨ 소극적 효과 유지하면서 적극적 효과 달성 위한 추가 방안 필요

- 앞서 본 일련의 경과 및 조치를 통해 가입 법관들이 ㉠ 게시글이 언제든 유출되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위협성을 자각하고, ㉡ 민감한 사안에 관한 무분별한 글 작성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의 소극적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위와 같은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는, 2월 2주 이후 매주 카페 내 외부의 강한 자극이 지속되었기 때문으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표현의 자유 무한 발산의 욕구가 급속히 회복될 것이므로, 소극적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환기 방안 필요

- 유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 검토 필요

●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및 반발가능성 대비 ⇨ 반발 최소화 방안

- 특정 카페 활동에 대한 개입은 여전히 표현·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중대한 억압으로 비춰져 반발을 부르거나 개입 자체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 우려 큼

-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가입 법관, 특히 운영진의 경우 게시글을 방치할 수 밖에 없거나 게시글 유출을 방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발 가능성 큼

- 다만 그러한 반발을 우려하여 추가조치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우므로, 반발을 최소화하는 대응방안을 검토, 시행하여야 함



■ 적극적 방안 검토

● 카페 운영진에 대한 운영방식 개선 권유 ⇨ 검토 필요

- 그 동안 반발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카페 운영진에 대한 직접 권유를 자제하여 왔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카페 내부에도 게시글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여 카페 운영방식 개선을 희망하는 법관이 상당수 생기는 등 명분과 제반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므로, 반발을 최소화하는 한도에서 직접 권유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음
- 법원행정처 및 사법행정라인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위압적이지 않도록 느껴지는 방법과 내용으로 카페 운영방식의 개선을 권유할 필요 있음

● 개선 권유 주체, 시기 및 방법 검토

- 카페 운영진 소속 법원장의 직접 권유는 부적절하고, 법원장을 통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선배·동료법관을 추천받아 권유하되, 카페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카페 개설자와의 인간적 신뢰관계 등을 감안하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고려 가능함
- 법원장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관이 있다면 카페 개설자보다 후배 법관이 먼저 권유해 보는 것도 과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음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과 동시에 권유할 경우 선배의 권유가 아닌 일종의 행정조치로 받아들일 가능성 ⇨ 권고의견 제시 후 적어도 1~2주 정도 논의가 무르익은 후에 권유함이 상당(그 사이 카페 내부 논의가 이루어지면 더욱 자연스러울 것임)
- 운영진의 성향상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솔하고 정중한 '상의'의 형태가 바람직 ⇨ 선배의 훈계 등으로 느껴질 경우 역효과 가능성 있음
- 운영진에 대한 구체적인 권유 방안은 해당 법원이 운영진과 대화 과정에서의 상황 전개 및 운영진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안을 선택, 권유함이 자연스러우나, 일응 상정가능한 몇 가지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함



● 카페 운영에 관한 구체적 권유 방안 검토

- 문제 소지가 있는 글의 유출을 차단하는 운영방안으로는 ① 카페 운영진이 문제될 글을 선별하여 직권으로 또는 가입 법관의 건의 등을 통하여 삭제하는 방안, ② 모든 게시글에 대하여 일정기간(예 : 1주) 경과하면 자동으로 일괄 삭제되도록 하는 방안, ③ 모든 게시글에 대하여 일정기간 경과하면 자동으로 일괄 비공개 처리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함
 - ①안의 경우 비례성의 측면에서 위험성이 적은 활동 영역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문제될 글에 한하여 조치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 운영진을 비롯한 일부 가입 법관이 동료 법관의 글을 자신들이 선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매우 강한 반발과 부담감을 이미 반복하여 드러낸 바 있고, ㉡ 문제글의 선별 기준이 불명확할 수 밖에 없어 해당글 작성자가 삭제에 반발하여 논란이 되거나 반발차원에서 글의 내용이 유출되는 등의 부작용 큼 ⇨ 부정적이고 실현가능성 희박함
 - ②안의 경우 ‘문제글 선별’에 대한 운영진의 반발과 부담을 덜어주면서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입 법관의 강한 반발 예상되고, 운영진의 성향상 수용가능성 희박함
 - ③안의 경우 앞에서 본 ‘문제글 선별’과 ‘동료 법관 작성글의 삭제로 인한 카페의 취지 무력화’에 대한 운영진의 반감을 최소화하면서도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적정
 - ③안의 경우에도 운영진의 성향상 거부할 가능성이 있음 ⇨ 권유의 주체, 시기 및 방법 등이 중요하고, 일괄 비공개 처리된 후 열람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운영자의 별도 허가를 거쳐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별 열람을 통하여 카페에서 이루어진 법관들의 자유로운 논의가 사장되지 아니함으로써 익명 게시판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음을 적극 설득할 필요
- ※ 공개기간 중 유출가능성이나 사후 개별 열람과정에서의 유출가능성 등의 위험은 어차피 카페를 전면 폐쇄하지 않는 불가피함
- ## ● 기타 방안 검토
- ① 기술적 사항 개선 권유 : 복사 금지, 마우스 우측 버튼 작동 금지, 복사



링크 생성 금지 등 기술적 조치(일명 ‘팸’ 금지) 필요

※ 다른 실명, 익명 카페나 블로그 등도 무단복사(퍼가기) 금지를 위해 흔히 취하고 있는 기술적 조치이므로, ‘인터넷 블로그 등을 보면 보통 그런 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카페에도 그런 조치가 되어 있는지’ 묻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권유할 수 있을 것이고, 운영진의 거부감도 크지 않을 것임

- ② 각급 법원 수석부장 등의 공지글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에 대한 안내공지 등을 통하여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익명 게시판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게시글 일정 기간 경과 후 비공개 처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정작용 등’ 을 당부함으로써 카페 내부에서 자발적인 개선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신중 접근 필요** : 카페 운영방식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존 가입 법관을 통한 자발적 변화의 장점이 있으나, 위 카페를 명시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카페의 존재 자체가 외부의 주목을 받고, 갑작스런 신규 가입자 유입으로 게시글 유출이나 자정작용 상실의 가능성이 커질 위험도 있으며, 운영진의 입장 변화 없을 경우 효과 미약할 것이므로 함

※ 가입 법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공지하는 방법의 경우는 장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가입 법관의 구체적 명단을 파악할 방법 없음**

- ③ 카페 실명 전환, 카페 활동 일시중지, 카페 폐쇄 등 근본적 해결책 권유는 부적절함 ⇨ 수용 가능성 희박함에도 오히려 그러한 권유 자체로 논란과 언론의 주목 대상 가능성 큼

※ 위와 같은 언급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운영진이 여러 사정상 운영에 부담을 느껴 자발적으로 유사한 결론에 이르도록 함이 바람직 (자발적으로 폐쇄 하더라도 폐쇄 사실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

▣ **소극적 효과 지속을 위한 노력 필요**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및 이에 따른 카페 내부 문제제기 및 개선 논의 유도 노력 등 지속되어야 함

● 기보고한 바와 같이 현실적 어려움은 크나, 신중함을 갖춘 선배 법관이 위 카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 계속 검토 필요



-
- **종합검토** : ③안을 중심으로 적극적 효과 기대가능한 다각적 방안 검토 필요
- 현재의 위축 효과 지속 여부를 포함한 카페 활동의 지속적 추이 관찰 필요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수준 및 강도에 따라 보다 강경하고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검토할 여지도 있음. 끝.



별지 1 김영란법 관련 본글 및 댓글

03.04. 08:33 제목 김영란법 국회에서 통과되었네요.

검경권력 비대화의 우려도 있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앞으로 변호사들하고 식사는 못하겠네요.^^
식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각출하거나, 우리가 내야하는거겠죠?ㅋ

댓글 9

03.04. 08:40 저는 좀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03.04. 09:46 제 측으로도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아요... 투명성, 공정성, 저도 극히 위 두 가지를 지향하지만, 김영란법으로 바뀔 정도의 비투명성, 비공정성이 아닌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작용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지켜봐야겠지요.

03.04. 10:26 걸면 걸린다^^ 기자들이 불러 다니게 될 것이란 이완구 총리가 기자들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03.04. 11:30 근데 1회 100만원 상당 월 합계 300만원 상당 식사나 향응? 받아보신적이 있나요? 저는 회사생활 십수년 간 구경도 못했는데 제 인간관계가 이상한건지? 스폰서검사 스폰서 공무원 뿌리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는 대찬성입니다.

↳ 03.04. 15:51 1박 2일 정도 제주도에 가서 호텔에 묵고 골프를 치면 충분히 넘어갈 것도 같은데요. ^^ 물론 저도 아직 그러한 향응을 받아보지는 못 하였습니다. ^^;

03.04. 17:56 (바로위 제주도 댓글 관련)요즘도 간 크게 그런 향응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계신가요? 뭐 주변에 말하고 다니진 않겠지요. 당연히 잘못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03.05. 09:52 **직급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나마 매우 소수이지만 계시긴 한 것 같습니다.**

↳ 03.05. 12:44 그렇기에 예전에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던 뇌물수수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불처벌됨으로써 국민의 사법불신의 근원이 된 바로 그 관행(이라 쓰고 범행이라 칭한다)을 없애야 한다고 하위법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 03.05. 11:39 법원보다는 검찰에 더 많아 보이긴 해요. 근데 예전에 들었던 농담 중에 "검사랑 밥 먹으면서 밥값 안 내는 사람은 기자뿐이다"라는 얘길 들은 적이 있네요.



별지2 '민감글 자진 삭제 제안'에 대한 댓글

제안 글 2. 27. 1차 게시 및 3. 1. 구체적 방안 포함된 2차 게시에 대한 댓글 전문

※ ① '이사야'는 이 사건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의 줄임말임

② '유스티티아'는 네이버에 개설된 여판사 모임으로, 비공개 카페이지만 닉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익명이 아니고 작성자를 사실상 특정할 수 있음

02.27. 08:26 문체에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다음 글 꼭 이어서 써주세요~^^

02.27. 14:27 글쓰는분의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준다는....

02.27. 19:16 법관들이라 이 정도는 지킬 소양이 있을거 같아요.

02.28. 05:52 아 저도 이 사건 알아요. 보면서 이사야 떠올린것도 똑같네요. 정보의 축적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유로운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는 퍼가기 금지 복사 금지 평 활용 등이 적극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03.01. 03:52 좋은 고민 글 감사합니다. 원글님의 이사야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네요. 저도 유사시 외양간 버리기가 불가피하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소중한 공간을 지킬 수 있는 대책 강구에 머리를 굴리게 되는군요.

유스랑 다르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일단 유스는 사직해도 회원 자격이 유지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반대입장입니다만, 실명활동으로 이미 친분이 있는 터라 그런 것 같아요. 한편 평문화는 유스에도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평할 권리는 당연한 글쓰는이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설령 댓글이 달려 있어도 말입니다. 다만 운영진에게 평 권한을 주는 것은, 운영진이나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하네요.

↳ 03.01. 04:05 운영진에게 삭제, 검열 권한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이사야 운영진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을 듯합니다만. 반대로 글을 삭제할 '의무'가 운영진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 회원들이 댓글로 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다면 그때 운영진이 최종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원글님께서 급한 대로 평문화부터 제안하신 것 같고, 저도 당장 다른 수는 안 떠오르는데, 다른 아이디어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남성회원들이 기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익명이기까지 한 이곳이 유스보다 좀 더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걱정은, 제 근거없는 편견의 발로이기를 바랍니다...

03.01. 11:33 글쓰신분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유스는 사직시 회원등급이 조정되어서 일부 게시판 글은 접근이 불가능해진다고 해요.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보다 아이들 키우는 얘기, 아주머니 얘기가 많으니 감사하게도 외부의 관심이 덜하겠지만요.

03.01. 21:34 유스티티아는 뭔가요?;;;

↳ 03.02. 09:58 여판사들의 친목카페입니다...거기도 비공개친목카페예요

03.02. 00:44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여기에 쓰시는 글들 모두 기자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별로 틀리지 않을겁니다. 코트넷에 쓴 게시물들이 왜 등록되자마자 바로 언론 보도가 되겠나요. 언론인을 가족으로 둔 법원 직원, 법관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카페의 존재도, 이 카페에 올려진 글들도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을 것이고, 다만 그 취재 과정의 윤리성에 관한 비난 가능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도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ㄴ 03.02. 07:33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사들의 양식을 믿자..라는건 지나치게 나이브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03.03. 09:49 얼굴만 가렸지 법복을 입은 채 이 공간에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의식하고 있는 이상 우리 스스로의 자정작용과 검열작용을 거친 끝에(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올라오는 글들인 만큼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의 글들조차도요(평한 글도 포함하여). 법복 안의 신비가 좀 깨질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설령 알려진다해도 이상하게 전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유스보다도 이사야의 언론 노출이 더 두려운 이유는, 유스는 보다 사적인 내용들이라 언론 입장에서 보도가치가 없는 반면에 이사야는 법원과 사회에 대한 보다 공공적인 소재가 등장하기 때

03.03. 09:50 문인것 같아요.

ㄴ 03.04. 02:10 이 댓글에 공감합니다

03.04. 00:10 운영자중 1인입니다. 이사야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본문글 쓰신 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명백하지 않은 기준에 의한 운영자의 임의삭제는 위법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견해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운영방침으로 삼기 어렵다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종전 공지글인 <http://cafe.daum.net/leeprosapro/Z7cb/10> 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ㄴ 03.04. 01:26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운영자님에게 다양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은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카페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카페 회원들은 지금의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가 오래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이 다른 무엇보다 크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운영진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무엇보다 이러한 회원들의 바램부터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ㄴ 03.04. 01:27 그리고 운영자님이 걱정하시는 '명백하지 않은 기준에 의한 임의삭제의 위법성'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회원들의 사전양해가 전제된다면 위법할 일이 없을 거 같구요. 막연히 '견해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 수립 자체를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양해나 원칙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지금 운영진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ㄴ 03.04. 01:28 좋은 카페를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나친 부담을 드릴 생각은 없지만, 카페지기로서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의 보장 vs. 침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운영자로서 또는 글쓴이로서의 책임 vs. 무책임'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되네요.

03.04. 02:18 바로 위 댓글(운영진의 댓글에 대한 댓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간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기탄없이 오간 글들이 소중한 것이고, 모두 판사임을 걸고 쓴 글인 이상

ㄴ 03.04. 18:46 오해가 있으신데, 기탄없이 오간 글을 막거나 바로 없애자는게 아닌것 같아요 축적할 필요는 없으니 민감한 글은 일정기간후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공간을 지키고 기탄없는 이야기도 계속 나눌수있겠죠

03.04. 14:16 판사임을 걸고. . 라는 부분에서 드는 의문. 회원님들은 동료나 위아래 계신 분들을 판사라는 이유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사야 회원 판사님들을 완벽한 존재로 상정하여 글 내용과 유출에 대한 걱정을 덜으려 하시는듯한지. 제가 너무 비판적인건지?



ㄴ 03.04. 18:06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예요. 불완전하지만 판사의 본분에 어긋날 정도의 내용들은 거를 수 있는 양식정도는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글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예외적일 겁니다. 이 안에서는 별 대꾸조차 없을 것이고요. 도퇴글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판사 중에 그런 양식 정도만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또한 굳이 노출할 필요는 없어도 노출을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임을 자각할 수는 있겠지요.

ㄴ 03.04. 18:50 도퇴글이 항상 조용히 사라질까요? 건강한 게시판이라면 오히려 한바탕 토론속에 사라지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건 조용히든 떠들썩하게든 그런 도퇴글이 외부의 좋은 먹이감이라는거..

ㄴ 03.05. 12:39 제가 잘 몰랐던 용어인가 해서. . 도태되는 글 말씀이신거지요?

03.05. 09:50 회원 자격이 제한된 익명 카페에서 주의해야 할 글의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제안합니다.... 뜬금없나...?



‘이사야’ 익명 카페 동향 보고

2015. 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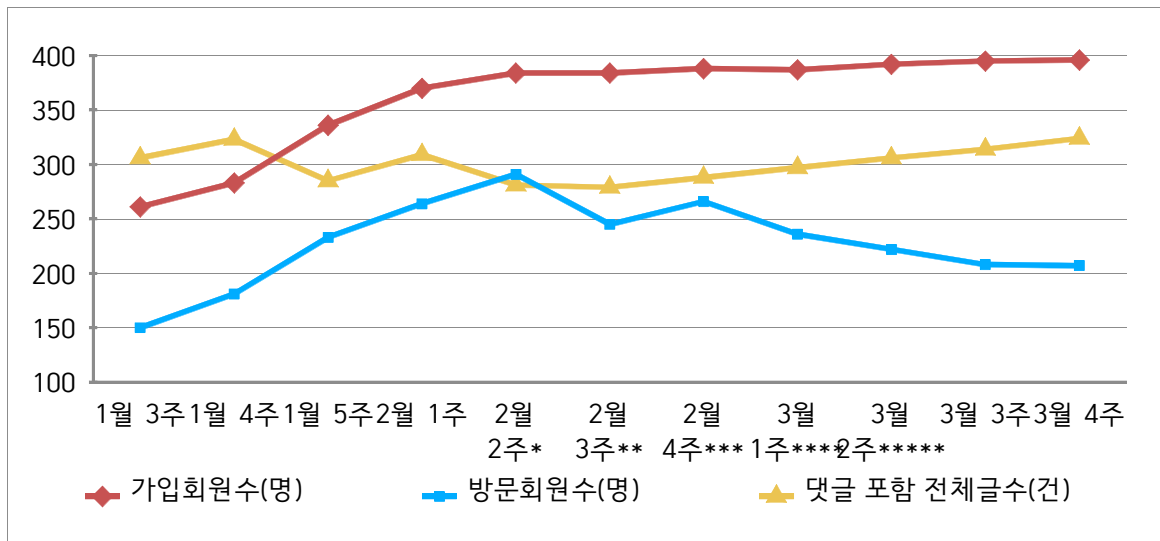
기획조정실

1. 개요

- ▣ 2. 11. 이 모 부장 익명 댓글 사건 최초 언론보도 후 약 8주 경과
 - 2. 23. 처장님의 당부말씀 코트넷 게시, 3. 11.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10호 의결 등 다양한 후속조치
- ▣ 법관 익명 카페 활동의 양적, 질적 변화 및 민감 게시글 삭제에 관한 내부 논의 현황을 살펴봄

2. 카페 활동 추이

- ▣ 2월 둘째주*(2. 11. 이 모 부장사건 언론보도) 전후 활동 量的 분석



** (2월 3주) 2. 22. 이 모 전 판사, 기자가 위 카페 존부를 자신에게 문의하였음을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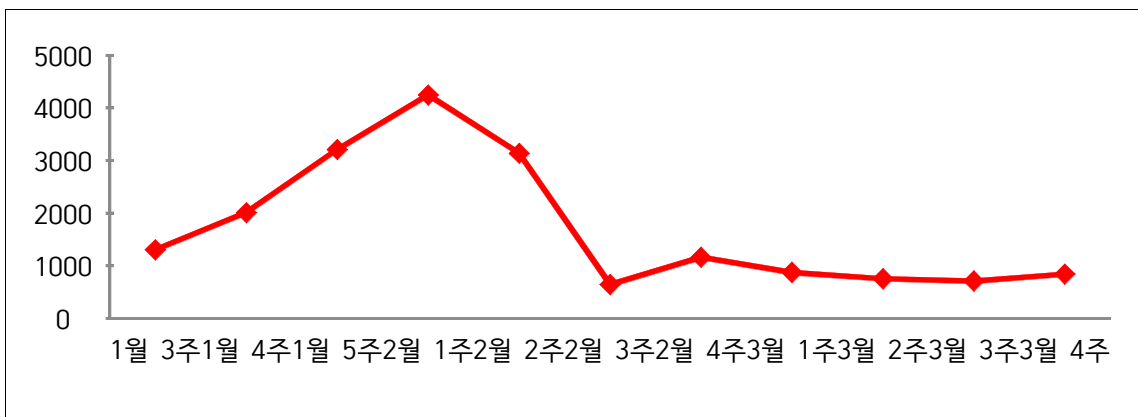
*** (2월 4주) 2. 23. 처장님, 법관에 대한 당부말씀 코트넷 공지 및 전체 메일

**** (3월 1주) 3. 1. 카페 회원, 민감 내용 게시글에 대한 삭제 방안 권유글 게시

***** (3월 2주) 3. 11.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10호 의결



- 매주 30명까지 증가하던 가입자 수 ⇨ **6주간 12명** 증가
- 8명의 운영자 중 1명 2. 21. 사임
- ‘방문회원수’ 지속적 감소 ⇨ 가입법관 중 상당수 카페 외면
 - 가입법관 중 실제 활동 법관수에 해당하는 방문회원수 6주새 70명 급감
- 총페이지뷰(총방문수) 급감 ⇨ **카페 활동 전반 위축**



- 카페 실제 방문 총횟수로서 카페 활동에 대한 관심·열성도를 반영함

- 전체글 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복세 ⇨ 質的 분석 필요

▣ **전후 활동 質的 분석** ⇨ **민감한 내용의 본글 및 댓글 추출**

	전체 글수 (댓글포함)	민감 본글 (댓글)수	민감글 비율	주제
1월 3주	1,302	7(50)	3.8%	대법관 제청, 기업인 가석방, 검찰비판
1월 4주	2,010	4(57)	2.8%	땅콩회항, 판사구속, 상고법원
1월 5주	3,209	5(58)	1.8%	전관예우, 법원내 세대간 갈등, 상고법원
2월 1주	4,245	8(106)	2.5%	신○○ 대법관 퇴임, 대법관 제청, 부의 세습, 상고법원
2월 2주	3,137	4(36)	1.1%	원세훈 사건, 대법관 제청, 검찰비판, 언론과재벌
2월 3주	642	0	0%	
2월 4주	1,160	0	0%	
3월 1주	872	1(9)	1.0%	김영란법, 합의부장 기록 미검토(자진 삭제)
3월 2주	751	1(4)	0.5%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최
3월 3주	708	1(8)	1.1%	법관 평가와 법관의 독립
3월 4주	840	1(12)	1.4%	변협의 전 대법관 개업신고 반환



- 2월 3주 이후 민감한 글 수치상 미미
 - 2. 11. 이 모 부장 사태 직후에는 여전히 '검찰 출신 대법관', '재벌2세'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룬 글이 일부 있었음
 - 2. 22. 기자가 카페에 대하여 취재 중이라는 사실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민감한 글이 현저히 감소함 ⇨ 여론의 관심에 대한 부담이 결정적인 요소
 - 순수한 업무 관련 노하우 공유 및 질문 글이 대다수이고, 일상생활 관련글이 나머지를 이룸
- 민감글의 경우에도 내용 역시 매우 신중해짐
 - 인사청문회, 변협 사태 등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전달하거나 법원 입장 옹호하는 내용이 절대 다수임
 - 현재까지 유일한 예외가 김영란법 관련 글임(전문 별지1 첨부)
- 복사 및 스크랩 금지 기능 활성화
 - 카페글 작성자는 자신의 글에 대하여 '스크랩' 또는 '복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정할 수 있음 ⇨ 이번 사태 후 종전과 달리 대부분의 글에서 스크랩 및 복사 금지 설정 추세

3. 향후 계획

- ▣ **카페 활동 반등 여부 면밀히 계속 관찰**
 - 최근 가입자수 및 게시글의 총수에서 미약하나마 반등 기미 있음
 - 양적인 추이 외에도 민감한 글의 내용 및 카페의 분위기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모니터링 지속할 필요 있음
- ▣ **카페 전반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 시행 시까지 신속보고 태세 유지 필요. 끝.**



별지 1 김영란법 관련 본글 및 댓글 전문

03.04. 08:33 제목 김영란법 국회에서 통과되었네요.

검경권력 비대화의 우려도 있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앞으로 변호사들하고 식사는 못하겠네요.^^
식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각출하거나, 우리가 내야하는거겠죠?ㅋ

댓글 9

03.04. 08:40 저는 좀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03.04. 09:46 제 측으로도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아요... 투명성, 공정성, 저도 극히 위 두 가지를 지향하지만, 김영란법으로 바뀔 정도의 비투명성, 비공정성이 아닌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작용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지켜봐야겠지요.

03.04. 10:26 걸면 걸린다^^ 기자들이 불러 다니게 될 것이란 이완구 총리가 기자들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03.04. 11:30 근데 1회 100만원 상당 월 합계 300만원 상당 식사나 향응? 받아보신적이 있나요? 저는 회사생활 십수년 간 구경도 못했는데 제 인간관계가 이상한건지? 스폰서검사 스폰서 공무원 뿌리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는 대찬성입니다.

↳ 03.04. 15:51 1박 2일 정도 제주도에 가서 호텔에 묵고 골프를 치면 충분히 넘어갈 것도 같은데요. ^^ 물론 저도 아직 그러한 향응을 받아보지는 못 하였습니다. ^^;

03.04. 17:56 (바로위 제주도 댓글 관련)요즘도 간 크게 그런 향응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계신가요? 뭐 주변에 말하고 다니진 않겠지요. 당연히 잘못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03.05. 09:52 **직급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나마 매우 소수이지만 계시긴 한 것 같습니다.**

↳ 03.05. 12:44 그렇기에 예전에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던 뇌물수수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불처벌됨으로써 국민의 사법불신의 근원이 된 바로 그 관행(이라 쓰고 범행이라 칭한다)을 없애야 한다고 하위법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 03.05. 11:39 법원보다는 검찰에 더 많아 보이긴 해요. 근데 예전에 들었던 농담 중에 "검사랑 밥 먹으면서 밥값 안 내는 사람은 기자뿐이다"라는 얘길 들은 적이 있네요.

법관 익명 카페 개설자와 소속 법원장 면담 후속조치

1. 면담 결과

■ 8. 12. 인천지방법원장과 익명 카페 개설자인 홍○○ 판사 면담

■ 법원장 제안

- 카페 게시글에 복사방지기능 등 설정으로 유출 방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글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필요한 경우 카페 운영에 대한 전산적 기술적 지원을 약속

■ 개설자 입장

- 자신은 카페 운영자에 불과하므로, 카페 회원 전체의 의견 수렴 후 조치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고 답변

■ 그 외, 코트넷에 익명 게시판 설치 건의 있었으나 불가하다고 답변

■ 카페 공지글 제시 필요성

- 홍판사가 카페에 의견 수렴을 위해 공지글을 올릴 예정이나, 본인이 비공개 전환 등의 조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입장이어서 공지글의 수위나 설득력이 약할 우려 ⇨ 적절한 수위의 초안을 제공할 필요 있음

2. 공지글 제시

■ 기본 방향

- 회원인 법관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유출방지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하는 내용 및 표현 필요

■ 예시

이사야를 아껴주시는 판사님들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최근 법원의 어른인 선배법관으로부터 우리 이사야에 관한 부탁 말씀 내지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 선배법관도 주변의 다른 법관들과 많이 상의하고 고민하신 끝에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의 요지는,

우선 이사야가 법관의 품위에 어긋나는 저속한 표현은 찾기 어렵고, 나름의 건전한

자정작용과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알고 있고, 익명 카페의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게시글이 대부분이라고 하여 국민들이 그러한 카페의 존재나 게시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먼저 법관만 가입되는 폐쇄공간이라 하여도, 언젠가는 유출을 피할 수 없다. 카페 회원이었다가 퇴직한 변호사, 카페 회원의 가족인 기자, 검사, 변호사 등을 통한 유출에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 그리고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400명이 넘는 회원 중에 한 두 명은 동료 법관 못지 않게 기자와 가까운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이○○ 전 판사도 이사야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법관이 직접 유출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언론의 집요한 취재가 있으면 어차피 공개를 막을 수 없다. 모든 글은 언젠가는 국민이 날 것 그대로 읽게 된다고 봐야한다.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예를 들어 올 초에 이사야에서 전관예우 논의를 하면서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많은 판사가 법원에 근무 중', '주변의 부장님 심지어 단독 중에도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사람 있다', '부장이 대놓고 봐줘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불가능한 결론이 나왔다'는 댓글이 있었다. 이런 글이 공개될 경우 국민들이 갖게 될 극도의 사법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모든 법관들이 앞으로 수십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재판을 하면 그 엄청난 충격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동안 언론이나 변협 등의 일부 문제제기는 '그들의 편향된 정보 내지 일부 사례의 과장'이라고 방어할 여지라도 있었지만, 법관들이 스스로 위와 같이 말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그냥 모든 사건에서 전관예우에 따라 불가능한 재판을 하는 조직이 되고 만다.

이사야 회원 대부분도 대부분의 법관처럼 법원을 정말 아끼고, 재판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연히 카페 글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합리적인 토론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방치하다가 저런 내용이 유출되면 뒤늦게 크게 후회하지 않을까.

전관예우 말고도 '부장판사가 기록은 전혀 보지 않으면서 사건처리 통계만 압박한다', '내 주심 아닌 사건일 때 법정에서 낙서하거나 딴 생각한다', '지원에서 사무분담은 정치판을 뛰어넘어 동물의 왕국 수준이다'라는 등 수많은 내용과 표현들이 우리 법관들끼리 토론하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지 몰라도, 단 하나라도 국민이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묵묵히 일하는 법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

카페 회원 중에 '유출되면 그때 카페를 폐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 유출되는 순간 법관의 명예와 재판에 대한 신뢰는 돌아킬 수 없지 않을까.

물론 이러한 불신들이 카페 회원인 법관분들의 책임 때문은 아니지만,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의혹을 확산으로 바꾸고, 법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신을 촉발하는

데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법관들이 관심 주제에 대하여 일정기간(예를 들어 일주일) 자유롭게 논의를 하고 난 후, 해당 글을 삭제하거나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당 글을 비공개로 전환함으로써 외부 유출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을 권유하셨습니다. 삭제하는 것에 비하여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하면서도 유출로 인한 동료 법관 및 이사이 법관들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하십니다. 회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요청하여 해당 글을 다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글이 영원히 사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그 밖에도 위와 같이 자유롭게 논의가 진행되는 기간 중 (상당수 다른 카페들이 하고 있듯이) 모든 본글 및 댓글에 대하여 복사 방지, 폼 방지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 역시 법관들의 논의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안으로 제안하셨습니다.

복사 방지 기능 등까지 제안하시는 걸 보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정말 염려해서서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취지로 이해되었습니다.

유출 방지를 위한 삭제 제안에 관하여 종전에도 카페에서 논의가 있었고(운영개시판을 참조해주세요^^), 당시 운영진은 동료 법관의 글을 선별하여 삭제하는 것은 운영진의 권한을 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 제안은 글을 선별하지 말고, 삭제하지도 말고, 모든 글에 대하여 일정기간 후에는 비공개로 전환하되, 필요한 회원은 운영진에 열람을 요청하여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회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운영진은 판사님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익명카페 설득논리 및 대응방안 검토

1. 검토 배경

- 법관 인터넷 익명카페 '이판사판'의 개설자 홍○○ 판사(○○지법, 35기) 상대로 카페 운영방식 개선을 직접 권유할 예정 ⇨ 개인적 친분관계나 소속 법원장과의 관계 등에 의존한 **인적·정서적 접근 내지 부담감만으로는** 기존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 높지 않음
- ①법관으로서 법리적인 논증과 판단을 중시할 수 있음 ⇨ 개설자 설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설득 논리를 추가 검토·제공할 필요 있음
 - 개설자는 위 카페에 '법관의 품위에 반하는 정도의 저급한 표현이나 게시물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고, 실제 그러한 측면도 있음 ⇨ **저급한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페의 활동이 제한되고 운영방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필요 및 당위에 대한 설득 논리가 필요함
- ②위와 같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소속 법원장의 권유에 응하지 아닐 경우 취할 수 있는 **최종 대응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 있음

2. 설득 논리 검토

- 사법부 존립의 근거이자 기반 ⇨ **국민의 신뢰**
 - 주권자로부터 선출되지 아니하여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판결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 법관에 대하여 **불가침의 독립성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이유**
 - 정보화·다원화된 사회에서 기존의 권위가 해체되고,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의 비판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은 법원이 중심을 잡고 사회의 극심한 갈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소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다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국민의 신뢰를 위한 법관의 책무** ⇨ **기본적 품위와 공정한 외관**

- 국민은, 단순한 법률기술자 내지 직업공무원이 아닌 **성숙하고 신중한 인격체로서 모두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관을 희망**함
- 재판업무는 물론 사회적 이슈, 개인생활 등에 대한 **법관들의 '민낯' (단어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국민에게 드러나는 경우는 물론, 법관들 사이에 일종의 '해방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알려지는 경우에도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냉소,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

☑ 올 초 이판사판의 실제 게시글 중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많은 판사가 법원에 근무 중', '주변 부장님 심지어 단독 중에도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판사가 있다', '부장이 대놓고 봐줘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불가능한 결론이 나왔다'**는 표현의 댓글이 상당수 있었음

⇨ 현직 판사들이 위와 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질 경우 국민은 **전관예우를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 법원의 모든 판결이 전관예우에 의해 결론이 조작된 것이라고 확신**을 갖게 될 것임.

- 이판사판 회원인 판사가 어떠한 의도로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는지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음

- 이로 인한 극도의 사법불신을 이판사판 운영진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지. **동료·후배 법관들이 향후 수십 년간 최선을 다해 야근하고 재판한다고 해도 위 몇 마디가 공개됨으로 인한 불신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음**

☑ 최근 이판사판에서 논란이 된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과 연수원 출신 법관 사이의 이해대립과 갈등' 또는 '부장 및 배석간 갈등' 등의 이슈도 마찬가지임

⇨ **'부장판사가 기록은 전혀 보지 않으면서 사건처리 통계만 압박한다', '배석판사는 영혼 없는 판결작성기계에 불과하다'**는 글을 읽은 국민이 법원의 재판을 도대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 이는 위와 같은 현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일부 현실이 부당한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

- 판사들끼리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고 공감함으로 인한 순기능보다 그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짐으로 인한 부작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임**

▣ **법관의 표현의 자유** ⇨ **법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한될 수밖에**



없음

- 헌법 제103조의 양심은 주관적·개인적 양심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객관적·법리적 양심임 ⇨ 법관은 온전한 법해석과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는 가장 천부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도 때로는 포기하여야 함 ⇨ 표현의 자유 역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제한을 피할 수 없음
- 선출되지 않은 법관의 독립성 보장은 고도의 자기 절제 및 공직윤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임
- '익명 폐쇄 카페'라는 사정은 아무런 참작 요소가 될 수 없음 ⇨ 오히려 ①'법관만 가입하는 카페'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국민은 이판사판의 일부 인식, 의견, 성향, 품격을 법관 사회 전체의 인식, 의견, 성향, 품격으로 받아들일 것이 명백하고, ②온라인 매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카페의 표현 하나하나가 그대로 외부, 특히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에 불과함
- '표현의 자유 및 표현된 내용의 정당성'만을 내세우는 것은 책임 있는 법관으로서의 자세로 보기 어려움 ⇨ 그 표현이 국민을 상대로 작출해 낼 의관과 오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함

■ 법률 선진국의 논의

- 우리나라 못지않게 법관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에서도 법관의 익명 인터넷 활동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음
- 영국의 Senior Presiding Judge for England and Wales(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을 관할하는 항소법원장격)가 2012년 제정한 '법관을 위한 인터넷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규정' ⇨ '익명으로 인터넷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신상정보가 밝혀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관이 익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법관임이 밝혀지면 법관의 공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공



공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취지

- 위 규정에 위반되는 **기존의 글을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도록 명시함**
- 미국 연방대법원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자료집 및 미국 법무부의 행동지침 등에 의하더라도 익명 활동은 엄격한 규제 대상임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익명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법관으로서 이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

☑ 2012. 5.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 SNS에 게시한 정보는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널리 전파되어 계속 존속할 수 있으므로 공개적 성격이 있음**

▶ 법관은 SNS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자신의 신상정보와 게시물의 공개범위 설정 및 관리에 신중해야 함 ☞ 8개월 전인 2014. 11. 게시글 중 **"내 주심 아닐 때 나는 법정에서 메모지에 낙서하거나 딴 생각한다"**, "내 주심 사건 기록 본다"는 내용 역시 유출되면 재판의 신뢰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임

▶ 법관은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품위를 유지하고, 법관으로서의 공정성 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편견 등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법관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함

☞ **"원세훈 판결 1심 재판장의 승진을 보고 많은 판사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지원에서의 사무분담시즌은 미니정치판을 뛰어넘어 동물의 왕국 수준의 스펙타클함을 보여주는 듯. 강한자가 살아남는건지 살아남는자가 강한건지"**라는 등의 게시글은 국민의 입장에서 법원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크게 실망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사회적 논란이 명백히 예상됨

☑ 2015. 3. 권고의견 제10호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공개대상이 제한된 폐쇄된 인터넷 공간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 ▶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 ☞ 법관이 스스로를 “아래것들”, “판결쓰는 기계”라고 표현
- ▶ 재판의 내용에 대한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견표명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 익명으로 올리는 글이라도 그것이 어떤 경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하여,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함 ☞ “**고위 법관들이 대법관 승진을 위해 여당, 야당 눈치를 보며 미담사례로 소개될 판결을 일부러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게시글

■ 이판사판 법관들의 사전적·자율적 개선의 기회

- 카페의 게시글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운영진의 생각과 달리) 매우 높음 ⇨ 자동로그인 상태에서 가족, 친지, 기자 등이 보는 경우(특히 가족 중에 기자가 있는 경우), 퇴직법관이 종전 내용을 저장하여 둔 경우, 가입자 수 증가하면서 일부 법관 스스로 공개할 가능성 등 더구나 일부 기자는 위 카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음,
 - 예를 들어 퇴직한 법관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가 있다’는 카페글을 영입에 이용할 유혹을 느낄 수 있음
- 외부 유출 후 카페를 폐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 ① 이미 사법부에 대한 신뢰 및 동료법관의 자긍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이후임 ② 이판사판 카페의 회원들에게도 치명적인 죄책감과 상처를 남길 것임
- 법관으로서 타율적인 문제제기와 공격이 있기 전에 스스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심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임

■ 결론 (권유안)

- 법관들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 하거나 카페를 폐쇄하라는 것이 아님 ⇨ 게시글 공개시 사법부와 동료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치명상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라는 것임



- 사법부 정책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라는 것도 아님
- 마우스를 이용한 **복사 및 붙여넣기 금지, 링크 생성 금지**(이른바 '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같이 다른 카페도 흔히 하고 있는 **기초적인 유출방지책 조차 전면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음**
- 근본적으로, 공개시 법원 및 법관에 대한 **신뢰에 아주 조금이라도 손상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글은 운영진이 삭제하는 책임감**이 필요함
 - 개설자가 이 부분 권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나, 권유할 필요는 있음. 다만 압박으로 받아들여 반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나아가 **일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익명 댓글을 없애고 실명 글 쓰기만 가능하도록 하자는 논의도**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들이 반드시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글을 써야만 자유롭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선입견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단 실명 카페로의 전환 권유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외압 논란의 여지 있어 신중할 필요 있음
-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법관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약 1주간 **자유롭게 논의한 후 적어도 해당 글을 비공개로 전환함으로써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해야 함
 - 글을 삭제하는 것에 비하여 운영진의 부담이 덜 하고, 논의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명분도 있음
 - 비공개된 후에 꼭 필요한 법관은 운영진의 허가를 얻어 열람할 수 있을 것이므로, 논의가 사장되는 것도 아님
- 그 밖에 글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공개되어 나 자신과 동료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필요함

3. 운영진의 권유 거부 또는 불이행시 추가 대응 방안



■ 개설자 등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커 바람직하지 아니함은 기검토와 같음

■ **이판사판 익명 게시판의 코트넷化 방안**

- ① 행정처 심의관, 각급 법원 기획법관, 나아가 부장판사 이상 선배 법관 및 수석부장판사 등이 대거 **이판사판에 가입** ⇨ 한 두 명이 아니라 다수가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 법관의 부담 적음
 - 카페 운영진 ‘스스로 제한 없는 가입’의 원칙을 선언한 바 있어 가입 거부할 명분 없고, 실제 거부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어서 거부하기 어려움
 - 실제로는 4~5명의 가입자만으로도 아래와 같은 효과 기대할 수 있음
- ② 카페에서 사법정책 현안에 대한 오해, 선배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 등이 이루어질 경우 **적극 나서서 설명** ⇨ 자신의 직무를 밝히고 해명하는 것도 적극 검토
 - ⇨ 가입법관들로서는 자신의 **게시글이 사실상 공개된다는 부담감**을 느껴 공격적이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글을 작성하는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임
 - ⇨ 결국에는 **실명이 드러나는 코트넷과 비슷한 수준의 의견표명만이** 이루어지거나 (코트넷에서도 공개글을 올리던) 일부 성향의 법관만이 민감한 글을 올리게 될 것임
- ③ 나아가 위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이후에는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게시글에 대하여도 비공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글 게시 ⇨ 익명 게시판 존재로 인한 사법부 피해 가능성 원천 봉쇄
- ④ 이판사판 카페의 동향 파악 등에 과도한 사법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됨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2018. 6. 5.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안에 대한 내부 반대 움직임 포착

- 그간 상고법원 추진에 대하여 관망세를 취하던 일부 법관들이 최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면화·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짐
- [반대이유] ①실질적으로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CJ의 인사권 등 **CJ 권한 강화에 대한 반감** + ②**명분상으로** 승진보직 신설 등으로 인한 **사법부 관료화 심화 우려**일 것으로 추정됨
- [핵심그룹]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연구회 탈퇴 후에도 교류지속하면서 논의의 주축이 되고 있음 ⇨ 특히 서울고 등 김○○(15기) 부장판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표면화 배경] ①최근 주요 (보수)언론의 일련의 우호적 보도 및 ②야당 소속 반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 약화 등으로 입법환경상 긍정적 징표 ⇨ 상고법원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였을 것임

☑ 우리법연구회 2015. 5. 정기세미나

- ▶ 매월 열리는 정기세미나에서 상고법원을 주제로 다룸 ⇨ 국회 법사위 2015. 4. 상고법원 공청회 자료집에 수록된 논문 6개를 참석자가 소개한 후 전체 토론
- ▶ 25기 이하 지방법원 부장판사 4명, 31~34기 평판사 8명 총 12명 참석
- ▶ 견해가 11 대 1로 갈린 것으로만 알려짐

▣ 선제적 대응 방안 검토 필요성

-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외부로 표출될 경우 ⇨ 입법 추진에 중대한 장애
- ①외부 반대세력 상대 설득·여론전에 총력을 다해 왔음에도 **상당한 반대**



세력 엄존함 ⇨ 내부에서까지 반대 목소리 표출될 경우 ①내부 구성원의 큰 동요뿐 아니라 ②외부 반대세력에 대한 설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음

- ②특히 반대 법관들이 세 결집을 통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거나 단체행동을 할 경우 치명타가 될 수 있음 ⇨ 현재 논의 주도 법관들은 **단체행동에 나서본 경험이 있거나 성향상 단체행동을 주저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음

● 세 결집 자체를 방지할 필요성

- ①반대세력이 결집된 이후에는 설득 등을 통하여 일응 **무마된 경우에도 향후 다시 문제될 가능성** 높음
- ②외부적 의사 표출 여부와 관계없이 **상고법원 추진 및 정상적인 사법행정 시행에 불안요소가 됨**
※ 노조 대응전략, 인사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서도 상고법원 추진에 불안요소가 될 우려로 인해 각 제도의 검토, 시행과정에 부담이 되고 있음
- ③핵심 그룹이 법관이어서 소통과 설득을 통해 조기에 오해를 해소하고 타협점을 찾을 여지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 대응할 필요성** 있음

2. 대응 방안 검토

▣ [전제사항] 구체적인 정보 수집 필요

- 반대 법관들의 동향은 아직 첩보 수준 ⇨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①핵심세력은 물론 ②움직임의 목적과 ③세 결집 진행정도 및 고려 중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 있음
- 법관들의 자체적 움직임 여부 ⇨ 재야인사 or 야당의 반대 기류에 주된 영향을 미친 민변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파악할 필요

▣ [1] 접근방향] 강·온 접근 여부 ⇨ **유화·설득·타협 방안 바람직**

- 반대 법관들의 성향 및 핵심 그룹의 무게감에 비추어 **압박으로 느껴질 경우 반발로 인한 단체행동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 있음
- 반대 법관들이 구체적인 **단체행동을 목전에** 두고 있고, 설득이 어려



운 경우 등에 한하여 압박책 고려함이 타당함

- 비판 내지 문제의식에 대하여 **수용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필요**

■ **[2접촉대상] 주변인을 통한 우회적 설득보다는 핵심 그룹 상대 직접 설득 바람직**

- 재야인사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김 부장판사 상대 직접 설득할 필요 있음
 - 유력한 지인 등을 통한 우회적 설득으로 ①신중한 언행의 확률을 높이고, ②반대 활동 시기를 다소 늦추는 정도의 효과는 가능할 것이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 단계적 접근은 가능할 것임

☑ **상고법원 관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참석하는 내부 세미나 등 우선 활용 방안**

- ▶ 사법정책연구원이나 사법연수원 등을 통해 세미나 등 개최 가능
- ▶ 서울고등법원에서 김 부장판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함 ⇨ 다른 법관들의 상고법원 찬성의견을 통해 김 부장판사의 입장에 자연스러운 변화 도모
 - 단, 확률이 높지 않고, 특히 반대 움직임의 배경에 김 부장판사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 효과 기대하기 어려움

■ **[3접촉주체]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설 필요 있음**

- ①고위 법관을 상대로 한 접촉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서는 것에 별다른 부담 없음
- ②직접 설득하지 아니할 경우 핵심 그룹 입장에서 본심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음
- 행정처 실장급 이상

■ **[4접촉시기] 현황 파악 즉시 시행**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제적 대응 필요하고 미룰 이유 없음

■ **[5설득수단 및 논리] ⇨ 추가 검토 필요**

- 진솔한 접근과 의견교환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제거함



-
- 사법부 현안에 관한 내부 소통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대화의 장을 연 것이고, 특정 세력을 상대로 한 압박절차가 아님을 설명
 - 법률안 발의 이후 수정, 보완된 내용을 중점 설명 ⇨ CJ 권한 강화에 대한 비관적 견해를 적극 수용하여 권한을 대폭 내려놓으려는 입장임을 소개
- ex)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대안 제시 등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

2018. 6. 5.

기획조생실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안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인식 현황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상황
 - 최근 언론의 우호적 보도로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긍정적 기류 확산되면서, 상고법원 설치가 초래할 법관 사회의 조직체계, 인사패턴,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계층별 편차도 존재하여, 젊은 법관들은 무관심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고법 배석급 이상에서는 향후 자신들의 인사배치 등 이해타산적 입장과 시각에서 상고법원 제도를 바라보고 있음
 - 또한, 일부 진보 성향의 판사들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해 부족한 상태에서,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반감, 소외감 등을 기저로 반대 목소리를 표면화하려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음
- 법원 내부의 이해 고취 및 결속력 강화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가시적 방안 모색 필요
 - 법관들의 상고법원에 대한 열망과 기대는 법률안 통과와 필수 전제 조건 ⇨ 내부구성원의 응집된 결속이야말로 외부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기반
 - 법관들의 진정한 협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피상적 내부 소통 및 홍보 이상의, 상고법원에 대한 심층 소개, 법관 개개인의 관심 사항에 대한 직접적·구체적 설명, 반대 입장에 대한 설득 논리 등 구축하여 전파하는 방안 필요



2.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 등 모색

▣ 계층별 일선 법관들의 상고법원에 대한 주요 공통 관심사항, 의문점 등 파악

- [주안점] ① 일선 법관들의 진솔한 의견 청취가 관건, ② 이를 위해 다층화, 다각화된 의견 수렴 방안 모색
- [방안①] 각급 법원 기획법관들을 통해 일선 법관들의 분위기 파악, 질의 사항 등 취합
- [방안②] 상고법원 등 사법부 주요 현안 관련 법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자 입장에서 바라본 소속 법관들의 상고법원에 대한 시각 및 이해도 파악
- [방안③] 행정처 실국장, 부장, 심의관들의 개인적 네트워크 활용 ⇨ 각 계층별·직급별로 접촉 가능한 법관들로부터 상고법원에 대한 의견이나 주요 관심 사항 등 파악

▣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이해도 제고 및 설득 추진

● ㉠법원 내부용 심층 Q&A 자료집 준비

- 추출된 계층별·직급별 법관들의 관심 사항, 의문점 등 정밀 분석 ⇨ 타깃별 분류화

■ (예시 ①) 인사 발령, 보직 관점에서의 계층별·직급별 관심 사항 등

- ▶ [지법 배석판사] 장기적 관점에서 상고법원이 향후 법관으로서의 라이프 사이클에 미치게 될 영향 등
- ▶ [단독판사] 상고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전보 발령 기준, 사법부 관료화 우려 등
- ▶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법 배석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유지 여부, 현 직위에서 상고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 발령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
- ▶ [지법 부장판사] 상고법원 도입과 고등부장 전보 발령의 상관관계, 인사적체 해소 기여 여부 등
- ▶ [고법 부장판사 이상급] 상고법관 임명 절차, 임명 기준, 상고법관 임기 만료 후 인사 패턴 등



■ (예시 ②) 상고법원 도입 취지, 제도 개요 등에 관한 의문 사항

- ▶ 인위적으로 승진 대상 보직이 늘어남에 따라 법관 관료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 ▶ 현재와의 관계에서 대법원의 최고법원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 아닌지?
- ▶ '헌법위반' 또는 '판례위반' 사유는 주장에 따라 얼마든지 성립 가능하므로, 결국 어정쩡한 4심제가 되는 것 아닌지?
- ▶ 사실심 충실화와 상고법원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와 닿지 않음
- ▶ 상고사건 적체하는 주된 이유는 대법원이 하급심의 사실인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 ▶ 대법관 증원, 상고허가제는 차치하더라도, 고법 상고부, 대법원 이원적 구성 등 상고법원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제도 개선책도 많이 있는데, 왜 상고법원 제도만을 사법부가 올인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밀어붙여야 하는가?

- 분류화된 영역별로 체계적 답변 자료 작성

● ②Q&A 자료의 효과적 활용

- 사법연수원 경력별 연수의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 강의를 통해 소개
- 각급 법원 법원장들에게 자료집 송부 ⇨ 소속 법관들과의 티타임, 오만찬 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내용 전달
- 각급 법원 워크숍, 법관 간담회, 직급별 판사회의 등을 통해 정보 제공
 - 다만 외부유출 위험 방지를 위해 자료 배부를 지양하고 기획법관에 의한 프리젠테이션 활용
-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코트넷 상고법원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안 검토

■ 일부 법관의 반대 입장 외부 공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돌출 행동 위험성 높은 법관들의 상고법원 관련 입장 등 사전 점검하여 선제적 설득 작업 착수 필요
- 내부 설득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해 반대 의견 표방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위기 대응체제 가동
- 사전 분위기 감지 긴급 ⇨ 해당 법관 소속 법원장, 친분 있는 법관 등을



통한 자제 권고

- 언론사 기자 등과의 접촉을 통해, 보도 자제 또는 수위 툰다운 요청
- 보수 언론을 통해 대응 논리 유포 ⇨ 반대 입장 폄하·고립화 전략 추진
- 종래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돌출성 언행 전력 등 부각
- 후속 보도 제지로 부정적 분위기 확산 차단

3. 향후 계획

- ▣ 일선 법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그에 대한 풍부한 답변 자료, 설득 논리 마련을 위해 기초실, 정책실 등 관련 실국간 협업 수행
 - 기동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슬림화된 소규모 팀 구성 ⇨ 기획제1심의관, 기획조정심의관, 사법정책심의관
- ▣ 법관들 인식 현황 점검 및 관심 사항 등 취합: 7. 9.까지
 - 기획법관을 통한 의견 취합
 - 7. 7. 수도권 법원장 간담회 결과 분석
 - 기타 행정처 심의관 등 개별적 법관 접촉결과 취합
- ▣ Q&A 자료집 작성 : 7. 12.까지
 - 정책실 주도로, 법관들의 다양한 관심 사항, 의문점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
 - 상고법원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가
 - 대외비를 전제로, 설득력을 강조한 진술하고 풍부한 자료집 준비
- ▣ 기타 Q&A 자료집 활용 방안 등 최종 검토 결과 보고 : 7. 15.까지



차○○ 판사 재산관계 특이사항 검토

2016. 4. 6.

윤리감사관실

1. 검토 배경

▣ 차○○ 판사(35기) 재산관계 특이사항 검토 ➡ 재산총액 (금액 생략)(2015. 12. 31.기준)

● 재산총액 기준 대략 0,000/2,715(재산신고유예자 등 제외)¹⁾ ➡ 00.0%

2. 인적 사항

▣ 기본사항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년월일 ▪ 96. 2. ○○고등학교 졸업 ▪ 01. 2. ○○대 법대 졸업/08. 3. 동 대학원 석사 졸업 ▪ 사법연수원 35기 ▪ 09. 4. ○○○○○○법원 / 11. 2. ○○○○○○법원 / 13. 2. ○○지법 ○○지원 / ○○ ○○○○○○연구소 파견 / 15. 2. ○○지법 ○○지원
------	---

▣ 특이사항

● 코트넷 제도개선토론펙 등에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 게시

- 사실심 충실화 관련 판사 수 대폭 증원과 상고제한 추진 의견 등(2015. 8.)
- 법관의 언론기고 등에 관한 윤리규정, 국제협약관련규정, 주석정리(2015. 10. 1.)
- 대법원에서 내놓은 사실심 충실화 방안 분석 & 의료감정 절차 개선 모델 관련 (2015. 10. 24.)
- 비현실적인 사실심 충실화 방안의 현실화 방법론(2015. 11. 10.)
- 각종 회신 미착, 지연 확인 메뉴 및 일정기간 내 처리결과 입력의무화 시스템 구축 제안(2015. 11. 16.)

1) 현재 재산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순수하게 전산상 재산이력란 기재순으로 정렬한 자료를 토대로 함(올해 처음 재산등록전산시스템이 변경되어 어느 정도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 현시점에서 정확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움)



- 2015. 9.경부터 주간지인 시사인에 총 5회 분량의 연재 칼럼 투고
- 공시송달 요건 - 야간송달의 주간화, 공휴일 송달의 평일화 경향과 관련하여 (2015. 12. 2.)
- 최근 야간송달 관련 집행관 예규 개정 내용 관련(2016. 2. 12.)
- 다른 법원의 판사회의 개최, 선거 등 경험과 자료 공유 요청(2016. 3. 21.)
- 2016년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개선 의견(2016. 4. 2.)
 - 직무상 고발제도 시스템 도입 등 포함

● 언론기고 ➡ 주간지인 시사인에 총 5회 분량의 연재 칼럼 투고

- 현직 판사의 일주일을 공개합니다(2015. 9. 21.)
- 판사가 출세는 포기한대도, '근무평정'은(2015. 10. 6.)
- 현직 판사의 고언, '5분 재판'은 이제 그만(2015. 10. 14.)
- 대법원이 풀어야 할 상고제도(2015. 10. 20.)
- 독일에서 '도가니' 사건이 일어났다면(2015. 10. 27.)

● 2015. 4.경 법원도서관에 논문 각주 인용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등

▣ 친인척관계

● 차○○ 고등부장(○○기)과 사촌관계임

3. 재산변동 내역

(단위 : 천원)

기준일	토지	건물 (전세권)	예금	증권	채무	총액	순증감액	비고
2009. 4. 1.					(표 내용 생략)			
2009. 12. 31.								
2010. 12. 31.								
2011. 12. 31.								
2012. 12. 31.								



기준일	토지	건물 (전세권)	예금	증권	채무	총액	순증감액	비고
2013. 12. 31.	해외연수 기간 중 재산신고 유예							
2014. 12. 31.								
2015. 12. 31.								

▣ 사인간의 채무 관련

[2014. 12. 31.기준 재산신고 시 제출한 소명자료]

(생략)

▣ 직계존속에 대한 고지거부

- 망 부 차○○ : 2009. 4. 23. 고지거부, 등록제외
- 모 조○○ : 2009. 4. 23./2011. 9. 26./2013. 11. 13./2015. 11. 13 각 고지거부

▣ 특이사항 ➡ 없음

(재산총액 변동 그래프 생략)

- (생략)
- (생략)

김○○ 부장판사 징계결정 후 대응방안

2014. 11. 7.

윤리감사관실, 기획조정실

1. 검토배경

▣ 김○○ 부장판사 징계절차 개시 예정

- 11/7(금) 법관징계위원회 심의 예정

▣ 징계결정 후 정치권, 언론, 법원 내부 등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 및 비판, 논란 예상

- [국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징계 필요성 및 양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음

▣ 특히 법관들 사이에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일반적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 있음 ⇨ 논란 확산 방지 필요

- 징계 수위 및 향후 법관의 표현의 자유 제한 범위에 대한 관심
- 이번 사안에 한정하지 않고, 일부 법관들이 코트넷 게시판 등을 통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 금지'는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일반적 문제제기, 비판을 할 가능성 있음
- ○○지법 성○○ 부장판사 게시글: 직권삭제와 관련하여 '법관의 표현의 자유' 거론한 바 있음

▣ 사전 대응방안 수립 필요

- 전체적 대응기조 수립 ⇨ 적시 대응 준비 ⇨ 논란 확산 방지
- 대상별 예상반응 검토 ⇨ 대상별 대책 수립

2. 주요 대응기조

- | |
|-------------------------------|
| ① 빠른 상황 파악 ⇨ 적시 대응 ⇨ 논란 확산 방지 |
| ② 공개적 의견 표명 자제 |
| ③ 우회적 내부 설명, 협조 요청 ⇨ 설명자료 작성 |
| ④ 또다른 논란거리 발생 가능성 차단 ⇨ 신중한 대응 |

■ ① 적시 대응을 위한 빠른 상황 파악

● 행정처

- 징계결정 후 주요 반응 지속적 파악
- 국회 반응(기조실), 코트넷 내부게시판(코트넷운영위원회), 언론 동향(공보관실)

● 전국 법원(수석부장, 기획법관)

- 법원 내부(법관) 논란, 동요 증폭될 경우 보고 협조 요청

■ ② 공개적 의견 표명 자제

- 징계 여부 및 양정은 법관징계위원회의 독립적 심의·결정사항 + 심의 내용 비공개(법관징계법 제13조)

- ⇨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안내글 게시는 부적절

- 오히려 논란이나 반발을 증폭할 우려

■ ③ 설명자료 작성 ⇨ 우회적 내부 설명, 협조 요청

- 법관윤리강령 취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글 작성

- 공보관실(언론 대응), 기조실(국회 대응) ⇨ 외부 설명 근거자료

- 법원장, 수석부장 커뮤니티 게시 ⇨ 내부 설명 근거자료

■ ④ 또다른 논란거리 발생 가능성 차단 ⇨ 신중한 대응

- 법원 내부 구성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게시글 내용의 부적절성, 징계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

- 일부 판사들의 경우 앞으로 법관윤리강령, 코트넷운영지침이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김○○ 부장판사의 게시글 직권 삭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하였음)

- ⇨ 징계결정과 관련한 내부 구성원 게시글이 올라올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또다른 반발을 불러 일으켜 논란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

3. 징계결정 외부 공개(보도자료 배포) 시 대응 방안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김○○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사전 통지② 전례에 따라 징계결과(양정),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절차만 공개③ 법원장, 수석부장 커뮤니티 안내글 게시 |
|---|

1) 김○○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사전 통지

- 자신의 징계결정 관련 내용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되지 않도록 보도자료 배포 전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필요

2) 공개범위 검토

▣ 징계결정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1] 징계심의 내용 비공개 원칙
 - 법관징계법 제13조: 징계 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
- [2] 법관징계위원회의 독립적 결정
 - 법원행정처가 법관징계위원회의 독립적 징계결정에 관한 구체적 심의내용을 공개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
- [3] 대국회업무 관련 고려
 - 국회: 수시로 법관, 법원공무원 징계에 관해 경위, 징계심의 내용 등 자료 요청
 - 법원행정처: 징계심의 내용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한 비공개 입장

- 언론 등을 통하여 징계심의 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향후 국회 요청에 대응 곤란

▣ 징계결정 후 언론대응 전례

● 보도자료 배포

포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결정(양정) ▶ 징계사유 ▶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 향후 절차
불포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심의의 구체적 내용 ▶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 전례

징계대상자	보도자료 기재사항
○○○, ○○○(2012년)	징계결정,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절차 개관, 전례
○○○(2012년)	징계결정, 징계사유, 구체적 위반조항인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대한 설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	징계결정, 징계사유,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향후 절차 개관
○○○(2014년), ○○○(2014년)	보도자료 미배포(징계결정 이전 언론 미보도)

▣ 김○○ 부장판사 징계 후 징계 내용 공개 검토

● 보도자료 배포

- 전례에 따름 ⇨ 징계결정(양정), 징계사유,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향후 절차만을 내용으로 함
- 보도자료에 배경과 이유, 근거 등을 기재한다고 해도 그 내용대로 기사가 나간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논란거리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음

● 공보관실 설명 자료 제공

- 법관윤리강령 취지 등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보관의 비공식적, 개

인적 설명을 위한 자료 제공 ◁ 법원장 커뮤니티 안내 게시글과 동일한 내용

3) 법원장, 수석부장 커뮤니티 안내글 발송

- 법관징계위원회 결정 이후 법관 및 사법부 내부 동요 우려
- 법원행정처 처장 또는 차장 명의로 법원장·수석부장 커뮤니티에 글 게시 ⇨ 법원장·수석부장으로 하여금 소속 법관이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설명, 설득을 통해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
- 게시글 주요 내용
 - [1] 위반 법령 내용
 - 법관윤리강령 제2조(품위유지위반), 제4조 제5항(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 금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3호(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의 내용
 - [2] 법관윤리강령 취지
 -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관의 의견표명을 금지하는 이유
 - 법관의 표현의 자유 제한의 근거, 법관의 직무상 내재적 한계
 - 코트넷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여도 공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전파가능성)
 - 외국 규정 및 사례 설명
 - [3] 과거 김○○ 부장판사의 황성한우 판결 비판 관련 안내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서면경고로 건의하였다는 내용(심의 내용은 비공개)
 - [4] 협조 요청
 - 내부 구성원들의 동요가 증폭되거나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발전될 기미가 있을 경우 바로 알려 줄 것을 요청
- 유의사항

- 안내글 본문(설명자료가 아닌 안내글 본문)을 법관들에게 그대로 메일링하지는 않도록 요청
- 내부 구성원들이 행정처에서 지침을 준 듯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주의 요청

4. 대상별 구체적 대처방안

1) 김○○ 부장판사

- ① 심리상태, 추가 반응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찰 필요
- ② ○○지원 지원장, 동기 부장판사들의 관심 요청

[예상]

- **본인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소극적 불인정(윤리감사관실 의견)**
 - 형식적으로는 징계결정을 받아들일겠다는 의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징계 불복 가능성** ⇨ **제한적 소극 입장**
 - 더 이상 논쟁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
 - 다만, (개인 신상정보이므로 중략) ⇨ 민변 등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불복하면 적극적으로 변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징계 이후 추가글 게시 가능성** ⇨ **제한적 소극 입장**
 - 가족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 앞으로는 코트넷에 글을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 ⇨ 추가글 게시 가능성은 적음
 - 다만, 본인이 예측한 것보다 징계 양정이 높게 나오거나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었다고 느낀다면 (개인 신상정보이므로 중략) 징계 심의의 부당성에 대한 추가글 게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김○○ 부장판사가 추가글을 게시할 경우 다른 법관들이 동요할 우려

[대응]

■ 징계결정 사전 통지 ⇨ 충격 최소화

■ 심리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 파악

- (명예관련정보이므로 중략) 매우 세심하고 주의깊은 관찰 필요 ⇨ ○
○지원 지원장에게 요청

■ 지인들을 통한 관심 표명

- 징계결정 후 ○○지원 지원장, 동기 부장들의 관심, 지원 요청
 - 다만, 지나친 위로로 오히려 반감을 사지 않도록 주의
 -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과는 구별 필요

■ 추가글 게시에 대한 대응

- 대응방법 ⇨ 또다른 논란을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 대응
 -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원장과 지인들을 통하여 게시글을 내리거나 자제할 것을 권유
 -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 지원장과 지인들을 통하여 징계 불복절차에 따라 불복할 것을 권유, 관련 글도 내리도록 권유
 - 징계심의 내용이 부당하다거나 징계위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경우 ⇨ 게시글을 내리도록 권유하고 삭제 등 코트넷운영지침에 따른 필요 조치 후 추가 징계 여부도 검토

■ 징계불복에 대한 대응

- 법관징계법의 규정에 따라 절차 진행

2) 법관 : '표현의 자유' 제한 논란에 대한 대응 방안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1] 법원 내부 분위기 지속적 파악[2] 법원장, 수석부장 통한 비공식적·간접적 내부 설명, 설득[3] 코트넷 게시글에 대한 적절하고 신중한 대응[4]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적 문제제기 시 법원 내부의 자연스러운 논의 유도[5] 논란이 확산되는 최악의 경우 연구회 연구주제로 논의 가능 |
|---|

[예상]

■ 전반적 분위기

- 법관들은 대체적으로 게시글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이므로 사안 자체에 대해 큰 동요나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법관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일반적 문제 제기 예상

- 징계 수위가 높을 경우, 일부 판사들이 코트넷 게시판에 '법관윤리강령'이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일반적 문제 제기를 하는 게시글을 쓸 가능성이 있음
- ⇨ 게시글에 내용에 동조하는 다른 법관들의 댓글이나 추가 게시글이 올라올 경우 한동안 법관들의 동요가 발생하고 논란이 지속될 수 있음
- 다만, 법원 내부적으로 게시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이러한 동요나 논란이 집단적인 의견으로 집약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됨

[대응]

■ [1단계] 분위기 파악, 간접적 · 비공식적 설명

- 전국 법원 기획법관을 통해 법원 내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파악
- 법원장, 수석부장 등을 통해 간접적, 비공식적으로 법관윤리강령 취지(법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제한의 불가피성), 외국 사례 등을 법관들에게 전파

■ [2-1단계] 코트넷에 글이 게시될 경우

- [1] 게시글에 담긴 내용이 법관윤리강령, 코트넷운영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 게시글에 대한 반박 논거 등을 법원행정처의 공식적 입장으로 게시하

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음 ⇨ 공식적인 논란을 촉발할 우려 있음

- 법원장, 수석부장이 소속 법원 법관들에게 설명자료의 논거를 바탕으로 비공식적, 간접적 설명과 설득을 하여 동요를 막도록 함
- 각급 법원 기획법관을 통해 다른 법관들의 반응, 법원 전체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파악함

● [2] 게시글 내용이 법관윤리강령, 코트넷운영지침에 위배될 경우

- 코트넷운영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함
- 법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수정 및 삭제권고 등에 있어서 특별히 신중할 필요
- 직권 삭제의 방법은 최후 수단으로 활용

■ [2-2단계] 다른 법관들의 동요 발생 시 ⇨ 법원 내부의 토론, 논의를 통한 해결 유도

- 법관 세미나 등에서 설명자료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등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법관들이 법관윤리강령의 취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유도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면서, 합리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도록 함

■ [3단계] 내부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 가중될 경우 ⇨ 연구회 등 공론의 장 마련

-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나, 징계의 정도가 매우 중하거나, 일부 법관이 논리적 설득력이 있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찬성하는 의견이 계속 게시될 경우, 법원 단위를 넘어선 집단적 의견 표명이 이뤄질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 '법관의 SNS 이용'이 논란이 되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연구회의 연구 주제로 삼아 법원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여 그 연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최후의 방안으로 고려 가능

3) 법원 직원(노조)

코트넷 게시글에 대한 걱정하고 신중한 대응

■ 예상

- 원세훈 판결 결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코트넷 게시판에 비판적 취지의 글을 올릴 가능성 있음
- 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현안이 있어 크게 이슈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파급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대응

- 법관의 코트넷 게시와 동일한 방안으로 대응
- 법원 직원들의 경우 법관들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명예훼손 등 코트넷운영지침에 위배되는 격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의 글이 올라올 가능성이 큼 ⇨ 코트넷운영지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또다른 논란이 촉발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

4) 정치권

- ①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한 거리 유지, 공식적 입장 표명 자제
- ② 필요한 경우 법사위 위원들에 대한 개별적 설명

■ 예상

- 징계가 중할 경우 야당 의원들의 반발 예상
- 반대로 여당 의원들의 경우에도 더 중한 징계를 요구하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음

■ 대응

- 공식적으로는 법관징계위원회의 독립적 결정으로서 법원행정처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징계사유(법관윤리강령 위배)만을 발표
- 그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나 입장 표명은 자제

- 다만, 강경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법사위원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설명자료 등을 통해 좀더 자세한 징계사유 또는 법관윤리강령의 취지를 설명할 필요 있음 ⇨ 향후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법원의 입장을 잘 설명

- 게시글 내용이나 정치적 입장과는 관계없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동료 법관의 의견 표명 자체를 금지한 법관윤리강령 위배 행위이고, 특히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했다는 점을 강조

5) 언론 / SNS

- ① 공식적 입장 표명 자제
- ② 언론의 성향에 맞는 공보관실의 비공식적·개별적 설명, 설득
- ③ 논란 가중 시 우호적 인사의 기고문 작성 등 고려

■ 예상

- 중징계 시 진보언론과 SNS의 비판적 기사, 게시글 올라올 가능성
- 반대로 보수 언론의 경우 더 중한 징계, 부적절한 언행을 한 판사의 업무 배제, 재임용 심사 강화 등을 요구하는 비판 기사를 쓸 가능성
- 다만, 시의성이 떨어져 법관들 내부의 추가적 문제제기 등이 없다면 크게 다루지 않을 가능성도 높음

■ 대응

- [1단계] 공식적 입장 표명 자제, 공보관실을 통한 내부 설명과 설득에 집중, SNS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여론 추이 파악
- [2단계] 지속적으로 비판 기사 및 여론이 심화될 경우 우호인사 기고(설득 논리 제공) 등 방안 고려 가능

5. 결론

■ 징계결정 이후 주요 대응기조에 맞추어 대상별로 대응하도록 함

- 빠른 상황 파악을 통한 적시 대응, 논란 확산 방지
- 공개적 의견 표명 자제, 법관징계위원회 결정과의 거리 확보

-
- 다각도의 우회적, 개별적 설명
 - 신중한 대응을 통해 논란거리 발생 가능성 차단
 - 김○○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세심한 관심, 관찰 필요
 - 법관의 표현의 자유 제한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응
 - 각급 법원 법관들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파악
 - 법원장, 수석부장 커뮤니티에 설명자료 게시 ⇨ 자연스러운 설명, 설득
 - 각급 법원 내부의 자체적·생산적 논의를 통한 해결 유도
 -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연구회 연구 등 방안 고려



차○○ 판사 언론사 기고 관련 검직허가

2015. 9. 21.

윤리감사관실

1. 검토 배경

■ 차○○ 판사(○○○○법원 ○○지원 35기)의 시사IN Live 글 기고

- 현직 판사의 일주일을 공개합니다. ➡ 5회에 걸쳐 연재 예고
- 2015. 9. 21. 기고(제1회) 중 주요 부분

“사실심인 1·2심이 사실판단 부분에서 심히 부실하니 원래 3심은 법률심이어야 하지만 사실 판단도 검토해줘야, 1·2심의 사실심 충실화가 가능하다.” 상고법원 찬성론 중에 이런 주장도 있다. 가능한 논리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판사들도 5분 재판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상시 야근, 주말 근무로 먹에 찬 상태로 일하는 판사가 많다. 상고법원이 법률심으로서 가진 권한을 넘어 더 충실히 사실심의 사실 판단을 깨는 월권적 행위를 해도, 사실심 판사들은 심리 강도를 높일 여유가 없다.

이미 대법원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으로 사실심 사실 판단 관여를 많이 했다. 하지만 사실심의 소극적 증거 채택의 심리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한국형 디스커버리(미국에서 당사자들이 주도해 서로 가진 증거자료를 현출시키는 제도) 등의 각종 사실심 충실화 대책도 결국 이 5분 재판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니 사실 대부분 판사도 별다른 감흥이 없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알 것이다. 스스로 원해서 내놓은 안도 아니고,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변호사 단체 요구로 명목상 내놓은 사실심 충실화 방안이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5년, 10년에 걸쳐 판사 수를 대폭(1.5~3배) 증원해, 5분 재판을 20~30분 재판으로 만들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사실심 충실화가 가능하다. 물론 나를 포함해 법관들도, 법관 수 증원과 더불어 기존 재판 모델에 안주하지 않고, 질 높은 새로운 재판 모델의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상당수의 법관, 특히 고위직 법관들은 판사 수 증원이 판사의 희소성을 떨어뜨려 사회 지위를 낮출 거라고 우려해 내심 반대하기도 한다.

- 차 판사의 기고가 계속적 기고로서 검직허가의 대상인지 여부 검토
- 차 판사 글의 법관윤리 위반 여부

2. 차○○ 판사



▣ 학력사항

- ○○. 2. ○○고등학교 졸업
- ○○. 2. ○○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3. ○○대학교 법과대학 석사졸업

▣ 경력사항

- 사법연수원 35기
- 09. 4. ○○○○○○법원 / 11. 2. ○○○○○○법원 / 13. 2. ○○지법 ○○지원 / ○○ ○○○○○○연구소 파견 / 15. 2. ○○지법 ○○지원(민사단독)

3. 겸직허가 요부 검토

가. 관련 규정

법원조직법
제49조(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3조(허가에 의한 관여)
① 법관이 법 제49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직위에 취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겸직 허가 요부

▣ '보수 있는' 기고인지 여부

-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겸직허가의 대상이 아님 ➡ 보수 유무 확인 필요

▣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무'에 해당하려면 어느 정도 '계속성'을 갖추어야 함

- 1회성 또는 간헐적 저술행위로 인한 서적의 간행은 1회적 행위이고 계속적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서적의 판매로 인한 인세의 계속적 수입이 있어도 행위의 결과가 지속



되는 것에 불과하여 “직무”로 볼 수 없음(법관윤리 책자 195면)

- 외부강의의 경우에도 1회성 외부강의는 겸직허가의 대상이 아니나, 강의기간이 2개월 이상인 계속적 강의, 동일기관 상대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이상의 출강이 예정되어 있는 등 직무수행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법관윤리 책자 190면)
- 차 판사의 기고가 5회 정도 계속될 예정이라면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겸직허가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윤리감사관실 토론회 결과)
- 다만 외부 기고의 경우 어느 정도 횟수의 기고이어야 계속성이 인정되어 겸직허가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법관들에게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바 없음(☞ 법관윤리 책자에도 기준이 소개되어 있는 외부강의와는 다름)
- 또한, 차 판사가 장문의 기고문을 미리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송부하였는데, 언론기관이 지면 관계상 이를 5회에 걸쳐 나누어 게재하는 경우라면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임(☞ 기고문 작성 횟수 확인 필요)

다. 유사사례 검토

1) 겸직허가를 받은 사안

▣ [2015. 4.경] 문○○ 부장판사(26기) 한겨레 신문 연재 소설(2015년)

- 우리 이웃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분쟁의 법과 상식에 기반한 지혜로운 해결 과정(재판 및 조정) ▶ 현재 ‘미스 함무라비’ 연재 중

▣ [2014년] 문○○ 부장판사(26기)

- 조선닷컴(프리미어 조선) ▶ 종료
- 중앙일보(문○○ 판사의 일상유감) ▶ 계속

▣ [2014년] 박○○ 부장판사(25기)

- 대한변협신문 칼럼 ‘법정단상’ 월 1회 ▶ 종료

▣ [2011년] 김○○ 판사(34기)

- 소년 조선일보 어린이 법률만화 ‘명판사 고려취’에 연재 원고 기고

▣ [2013년, 2015. 1.경] 허○ 판사(37기)

- (주)지학사 발간 「고교독서평설」에 1년 동안 ‘사회, 법정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기고



2) 검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안

▣ 법률신문 「월요법창」 ➡ 3주마다 한 번

- 성○○ 부장판사(연수원 22기) : 2015. 5. ~
- 임○○ 부장판사(연수원 29기) : 2014. 11 ~ 2015. 5.

▣ 법률신문 「법대에서」 ➡ 2주마다 한번, 각 10번 정도

- 김○○ 부장판사(연수원 22기), 장○○ 판사(연수원 32기) : 2015. 9.~
- 심○○ 고법판사(연수원 27기), 정○○ 판사(연수원 32기) : 2015. 3.~ 2015. 9.
- 예○○ 부장판사(연수원 22기), 이○○ 고법판사(연수원 27기) : 2014. 9.~ 2015. 3.
- 최○○ 부장판사(연수원 28기), 장○○ 고법판사(연수원 26기) : 2014. 3. ~ 2014. 9.
- 함○○ 부장판사(연수원 25기), 장○○ 고법판사 : 2014. 1. ~ 2014. 3.
- 함○○ 부장판사, 이○○ 고법판사(연수원 26기) : 2013. 9. ~ 2014. 1. 2.
- 배○○ 부장판사(연수원 25기), 박○○ 부장판사(연수원 22기) : 2013. 2. ~ 2013. 9.

▣ 한국경제 「한경제세이」

- 윤○○ 법원장(연수원 14기) : 2015. 3. ~ 4.까지 주 1회 9회 기고

라. 조치 검토

▣ 검직허가 신청을 하도록 요구 시 당사자의 반발 예상

- 검직허가가 요구되는 계속적 기고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그에 관한 기준이 법관들에게 사전에 안내된 바도 없음
- 검직허가를 받지 않고 법률신문 등에 계속적 기고를 한 법관들이 다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차 판사에게 검직허가 신청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상고법원에 관한 법원 내부의 반대의견을 탄압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예상됨



▣ 차 판사가 겸직허가 신청을 하고 이를 불허하는 경우 언론, 국회 등의 비난 예상

- 차 판사가 겸직허가 신청을 하고 이를 불허하는 경우 차 판사 본인은 물론, 언론, 국회 등 외부에서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의 반대의견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음 ➡ 得보다는 失이 많을 수 있음

▣ 대안

- 법원장, 지원장 등을 통해 자제를 권고하는 방법
- 겸직허가 신청을 허가하면서 법관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방법 등

4. 기고 내용의 법관윤리 위반 여부

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관련 법령

법관윤리강령
제2조(품위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둘째, 법관은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법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편견이나 차별을 드러내거나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검토 ➡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조치하는 것은 부적절함

- 기고문에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 등이 사용되지는 않았음
- 기고문 중 ① 사실심 충실화 방안이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변호사 단체 요구로 명목상 내놓은 안이고, ② 고위직 법관들은 판사 수 증원이



판사의 희소성을 떨어뜨려 사회적 지위를 낮출 거라고 우려해 내심 반대 ➡ 근거 없이 사법행정권자와 고위직 법관들의 의도를 곡해하여 단정적으로 표현

- 위 ①, ②는 사법행정권자, 고위직 법관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나아가 징계사유 중 하나인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할 여지도 있음
 - 고위직 법관들이 판사 수 증원이 판사의 희소성을 떨어뜨려 사회적 지위를 낮출 거라고 우려해 내심 반대 ➡ 객관적인 근거 없는 추측, 기득권 수호 이미지 고착
 -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변호사단체의 요구로 명목상 내놓은 사실심 충실화 방안 ➡ 객관적 근거 없는 추측, 목적 달성을 위해서 효과 없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이미지 형성
- 그러나 위와 같은 기고문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것이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것에 해당하느냐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차 판사 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대법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이라는 점에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도 많아, 위 기고문이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나. 공정성 유지의무 위반 여부

▣ 관련 법령 등

법관윤리강령

제3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둘째, 법관은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법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편견이나 차별을 드러내거나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법관은 SNS 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2007추127)

법관도 직무 외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주체이다. 따라서 법관은 민주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공공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명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관의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고, 공익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되고, 법원의 위신이나 권위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개인적인 의견의 표명도 제한된다. 이러한 표현내용은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중국적으로는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권의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에 의심을 들게 하고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법관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도 법관은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적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절제되고 균형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는 판단자로서의 직업 법관에게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자 덕목이며 이러한 중용지도의 덕목은 의견 표명의 방법에서도 요구된다. 왜냐하면, 법관의 역할과 사회적 영향력 및 법관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사안에 대한 법관의 의견은 비록 사견이라고 하더라도 그 파급효과가 중대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오도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법관에 대한 두터운 신분보장이나 직무상의 독립 등의 특권은 법관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서 부여된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는 법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서만 보장되고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관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거나 남용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벵갈로어 법관행동준칙 주석

법관은 다른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A judge enjoys rights in common with other citizens)

134. 법관은 임용 시에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전의 정치적 소신을 버리거나 정치적 쟁점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도 않는다. 그러나 공정성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지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대중적인 논쟁에 사법부가 관여할 적정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는, 법관의 관여로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관한 공중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는, 그러한 관여가 법관으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공세에 휘말리게 하거나 법관의 직무상 위엄과 양립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이다.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법관은 관여를 피하여야 할 것이다.

법관은 대중적인 논쟁에 휘말려서는 아니 된다(Judge should not be involved in public controversies).

136. 법관은 대중적인 논쟁에 부적절하게 휘말려 들어서는 아니 된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법관의 요체는 논쟁 대상을 객관적이고 사법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마찬가지로 법관은 공중에 대하여 법관의 특징인 초연하고, 치우치지 아니 하며, 선입견을 배제하고, 공정하며, 열린 마음으로, 공평하게 사건에 접근하는 것으로 공중에게 비추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공동체에서 다른 공인과 함께 논쟁에 참여하거나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함으로써 법관이 정치관에 뛰어들고 대중적인 논쟁에 참가한다면, 그 법관은 법정에서 재판할 때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해당 법관이 공개적인 의견을 표명한 바 있는 주체와 관련된 분쟁에 관해 재판할 경우나, 더 심각하게는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던 공인이나 정부부처가 소송 당사자가 되거나 증인이 된 경우에는 그 법관은 불공정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법관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외부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A judge may speak out on matters that affect the judiciary)**

138. 법관이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절하게 외부에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 그 논쟁이 법원 운영, 사법부 독립(법관의 보수와 혜택을 포함), 법 집행의 근본적인 측면, 또는 법관 개인의 청렴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경우에도 법관은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법관이 이들 문제에 관하여 적절하게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되고 특정한 상황이 법원에 사건화 되었을 때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암시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도 안 된다. 나아가 법관은 그의 공개적인 의견표명이 사법부의 견해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법관이 일반적인 사법부의 견해가 아닌 단지 개인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때때로 어려울 수 있다.

법관은 법과 관련된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A judge may participate in a discussion of the law)

139. 법관은 교육적인 목적이나 법의 약점을 지적하기 위한 법 관련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법관이 법안에 대하여 논평하는 것이 유익하고 적절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위헌 여부에 관해 비공식적인 해석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견해 제시는 피하여야 한다. 보통의 경우, 법안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견해표명은 실무적 영향이나 법안의 흠결사항과 관련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쟁점은 피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법적 의견표명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사법부 전체 또는 기관으로서의 노력의 결집 형태로 행하여져야 한다.

▣ 검토 ➡ 공정성 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조치는 것은 부적절함

● 법관은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함

- 상고법원 도입 여부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으로, 이에 관한 일방적인 입장의 의견 표명(특히 차 판사가 소속된 법원과 반대되는 의견 표명)은 법관과 법원을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차 판사의 기고문이 공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님

- 그러나 다른 한편, ① 법관의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견표명을 모두 공정성 유지의무 위반으로 본다면 법관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된다는 비판이 가능한 점, ② 상고법원과 사실심충실화 방안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것으로 사법부 구성원인 법관의 의견표명이 가능한 영역인 점(위 뺄살로어 법관행동준칙 주석도 사법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논쟁이 있는 사안일지라도, 법관이 외부에 의견표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 ③ 법관에게 공정성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해당 쟁점이 사건화되었을 때 재판하는 법관이나 법원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위 쟁점은 사법제도에 관한 것으로서 실제 사건화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 판사의 기고문 내용이 공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

▣ 관련규정

법관윤리강령

제7조(정치적 중립)

- 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 검토

- 차 판사의 글이 정치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라. 조치 검토(종합)



▣ 법관윤리 위반 여부 ▶ 단정할 수 없음

- 차 판사의 글 내용에 부적절한 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법관의 품위 유지의무, 공정성 유지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법관윤리 위반으로 조치 가능 여부 ▶ 신중 검토 필요

- 법관윤리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또한, 차 판사에 대해 법관윤리 위반이라 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사회적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함이 타당
 - 법관의 의견 표명과 관련된 이○○, 김○○, 이○○ 판사 사건 등이 발생하여 그들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그와 관련하여 법관의 의견 표명을 제한하는 권고의견들이 연이어 공표된 상황에서, 차 판사의 기고문까지 문제 삼아 법관윤리 위반으로 조치를 하는 것은 법관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음
 - 언론 등에서 상고법원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홍보 등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기고한 판사에 대해 법관윤리에 반하는 면이 있다는 이유로 어떤 조치를 한다면 언론, 나아가 국회로부터도 비난이 있을 수 있음
 - 현재 시행 중인 각급 법원의 간담회 등을 통한 내부소통 행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안

- 소속 법원장이나 지원장으로 하여금 차 판사가 언론에 글을 기고할 때 법관 윤리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방안
 - 차 판사의 지인을 통해 차 판사가 주장하는 법관의 대폭 증원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상고법원과 사실심충실화 방안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안임을 설득하는 방안
- ▶ 다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차 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 또는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음

2015. 3. 12.

단독판사회의 관련 보고

■ 2015년 상반기 단독판사회의

- 3. 16. 16:00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 현 집행부

 - 의장 : 김○○ 판사(30기)

 - 간사 : 허○(30기), 김○○(33기, **전출**), 유○○(34기, **전출**), 홍○○(34기)

■ 동향

- 김○○ 판사는, 판사회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이 입후보, 경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입장 ⇨ 관례에 따른 최선임자 의장 추천 및 선출이 아닌, **의장으로서 실제 활동할 의지를 가진 판사의 입후보를 추진 중**
- 김○○ 판사, 3. 9.자 메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지함

1. 후보자 자원 및 추천

가. 시한 : 목요일(12일) 24:00까지

나. 방식 : 이 코트넷 메일에 대한 답장 형식

다. 후보자의 요건 : 단독판사회의의 구성원(단독판사 및 단독판사와 배석판사를 겸하는 판사)으로서, 자원을 한 사람 또는 복수의 구성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즉, 이 코트넷 메일에 대한 답장 형식의 추천이 2인 이상으로부터 이루어진 경우)

2. 후보자 공지 : 금요일(13일) 9:00까지 코트넷 메일로 공지함

3. 후보자 사퇴 :

가. 시한 : 금요일(13일) 12:00까지

나. 공지 : 금요일(13일) 14:00까지 코트넷 메일로 공지

4. 표결 : 구성원의 과반 출석으로 개의, 출석자의 과반 득표자로 선출하되, 과반이 되지 않을 경우 다수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

* 후보자가 1인인 경우 : 출석자의 과반이 찬성하는 경우 선출

* 후보자가 없는 경우 : 현장에서 추천을 받아 후보자가 1인 이상인 경우 다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결 진행

- 김○○ 판사는 최선임자 6인(29기 3인, 30기 연장자 3인에 대하여 입후보를 독려하였으나, 모두 거절하였다고 함

성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기수
장○(張○)	(이하 열 삭제)	(이하 열 삭제)	29
이○○(李○○)			29
이○○(李○○)			29
정○○(鄭○○)			30
박○○(朴○○)			30
차○○(車○○)			30

■ 전망

- 입후보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장이 입후보 절차를 공지하였고, 그 절차에 큰 하자가 없는 이상, 공지된 절차에 따라 입후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
- 김○○ 판사는 제3의 후보(특히, 인권법 학회 회원)를 물색하여 입후보를 독려할 가능성 있음
- 장○ 판사, 또는 실질적인 독장이라고 할 수 있는 30기 최선임자 정○○ 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제3의 후보가 입후보한다면 작년과 같이 경선이 예상됨
- 소수의 의사가 다수 의견인 것처럼 호도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판사회의 당일 적극적인 출석을 독려 중

2015. 3. 17.

단독판사회의 관련 보고

■ 2015년 상반기 단독판사회의

- 3. 16. 16:00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 의장으로 최선임자인 장○ 판사 선출

■ 경과

- 전 의장인 김○○ 판사는 경선을 유도
 - 김○○ 판사는 최선임자 6인(29기 3인, 30기 연장자 3인에 대하여 입후보를 독려 하였으나, 모두 거절

성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기수
장○(張○)	(이하 열 생략)	(이하 열 생략)	29
이○○(李○○)			29
이○○(李○○)			29
정○○(鄭○○)			30
박○○(朴○○)			30
차○○(車○○)			30

- 입후보자 추천 결과 ⇨ 장○, 이○○, 정○○ 판사 추천됨
 - 장○ 판사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여 장○ 판사 추천 추진하였고, 장○ 판사가 사퇴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 판사도 추천 추진하였음
 - 김○○ 측은 제3의 후보들에게 입후보 의사를 타진 ⇨ 별다른 성과 없자 이○○ 판사를 추천한 것으로 보임

■ 결과

- 추천된 후보자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주변의 설득, 최선임자로서의 책임감 등으로 가장 선임자인 장○ 판사가 결국 단독후보로 남게 됨
- 회의일 찬반 투표 실시 ⇨ 참석자 만장일치로 장○ 판사 당선

■ 전망

- 김○○ 판사는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관례대로 최

선임자가 의장이 되었음. 또한 투표 결과 만장일치 찬성이어서 관례대로 박수에 의해 추대하는 형식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결과 ⇨ 김○○ 판사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음. 지지기반 상실

- 2014년에는 단독판사회의 집행부가 매월 모여 '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단독판사회의 내 '사무분담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운영 ⇨ 2015년에는 이와 같은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민사부 인사 관련 문제 점검

201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업무 관련

● 문제점

- 책임감, 배려심, 존중의 마음 부족으로 인해, 부장판사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채 우월적 지위와 권한만을 내세워 배석판사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소임을 게을리 할 우려 존재
- 재판장 기수가 낮은 합의부보다는, 재판장 기수가 높고 경력상향배석판사가 배치된 항소부에서 이러한 우려가 더 많이 존재
- '배석판사에게 메모 작성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전임 이○○ 법원장이 2015. 4. 13. 부장판사 전원과의 만찬 자리에서 '자제를 부탁하는 취지의 말'을 하여, 현재 부장판사들이 배석판사에게 메모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 상태임

● 항소부 운영 현황

- 항소부에는 모든 재판부에 재판연구원이 1명 배치되어 있는바, 재판연구원에게 일부 사건의 메모를 시키고 있음
- 재판장들이 경력상향배석을 믿고 의지하는 경향은 있으나, 예지희 부장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의욕이 있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장은 없다는 것이 배석판사들의 중론
- 간혹 사건처리 의욕이 지나치거나(○○○ 부장판사) 반대로 경력상향배석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부장판사(○○○ 부장판사)가 있다고는 하나, 전반적인 경향은 아닌 것으로 보임(○○○ 부장판사 재판부의 사건처리가 가장 앞서고 있어, 배석판사들이 힘이 들어 위와 같은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임)
- 항소부 부장판사의 기수는 21, 22기여서 아직 고등부장 보임을 완전히 포기할 기



수들은 아님 ⇨ 향후 기수가 높아질 경우 업무에의 의욕 상실에 따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 존재

- 제○○○부(재판장: ○○○ 부장판사)의 처리건수가 다른 재판부보다 적은 문제 있음 ⇨ 사건을 꼼꼼히 보는 개인적인 성향, 가정상황(매주 금요일 자녀가 있는 ○○○에 가서 지내다가 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직간접적인 독려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2015년 처리건수가 3월 22건, 4월 47건, 5월 43건, 6월 47건이었으나, 7월에는 84건으로 개선됨. 그러나 여전히 최하위권임)
- 합의부 부장의 경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고, 배석과의 관계도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없음

■ 전담법관의 역할 문제

- 고유 업무인 재판 업무 면에서 통계상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음
- 멘토로서의 역할
 - 기수, 나이의 차이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의지가 없다면 다른 법관들과 소통하기 힘든 한계가 있음
 - 다른 단독판사들의 평은 전체적으로 무난하나 (기수, 나이의 차이로) 식사할 때나 대화할 때 다소 불편한 점은 있다는 것임
 - 전담법관에 따라서는 적응 의지가 강하고, 재야에서의 경험, 법조선배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려는 전담법관도 존재(○○○ 판사). 반면 소극적이고 선배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다소 있는 전담법관도 존재(○○○ 판사)

■ 인사 및 사무분담에 대한 단독판사들의 정서

- 2014년 단독판사회의 의장인 김○○ 판사(30기)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법관 의사무분담에관한지침'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있었으나 좌절
 - '특정 사무분담의 선발 개념화로 사법관료화 조장'이라는 문제 제기 ⇨ 단독판사 13인이 사무분담 연구모임 결성하여 회의 개최
 - '희망'을 1순위로 하는 내규 개정안을 단독판사회의 안건으로 상정 ⇨ 부결



● 현재 내규 개정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태

- 2015년 상반기 단독판사회의에서 김○○ 판사의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추진 움직임(장○, 이○○, 정○○ 판사 등에게 후보로 나서 줄 것을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선임자인 장○ 판사의 단독 후보 출마로 귀결되어 만장일치로 최선임자가 의장이 되었음 ⇨ 김○○ 판사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음. 예전과 같은 지지세력 부재
- 2014년에는 단독판사회의 집행부가 매월 모여 '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7월에 메일로 공지 절차를 거쳐 단독판사회의 내 '사무분담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운영 ⇨ 2015년에는 이와 같은 활동이 어려운 상태이며, 현재까지 연구모임 결성 등 메일 공지도 없는 점에 비추어, 올해는 작년과 같은 사무분담 내규 개정을 위한 시도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단독판사 동향

- 김○○ 판사(30기, 중액단독): 2014년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서 사무분담 내규 개정 추진하다가 좌절. 올해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을 추진하였다가 좌절된 이후, 박○○ 판사(30기, 폐암 투병 중) 모금활동에 관여하는 외에는 별다른 활동 없음
- 허○(30기), 신○○(32기) 판사: 2014년 사무분담 내규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김○○ 판사의 지지세력 형성. 김○○ 판사가 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올해에는 별다른 활동 없음
- 이○○ 판사(29기, 신청단독): 서기호 의원 법원 재직 시절 함께 법관인사제도나 신○○ 대법관 사태에 관하여 문제 제기한 적 있으나,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올해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도 추천을 거부하는 등 별다른 활동 없음
- 이○○ 판사(31기, 중액단독): 박○○ 판사 게시글에 응원 댓글을 단 적 있으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별다른 활동 없음
- 박○○ 판사(31기, 파산·회생단독): 4. 16. 코트넷 자유게시판에 박○○ 후보자 임명 반대 글을 게시. 현재 별다른 활동 없으나, 돌발 행동 배제 못함



▣ 합의·항소 부장과 단독부장, 단독과 배석 사이의 사무분담 교류 문제

● 문제점

- 현재 사무분담 관행 유지 시, ① 일정 기수 이하 지법부장은 단독부장 보임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 ② 일정 기수 이하 판사는 배석판사 보임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 되어 기수 간 불균형 문제 심화

● 합의·항소 부장과 단독부장 사이의 사무분담 교류

- 지방권, 경인권 법원에 적용되고 있는 순환근무제도의 확대 적용 ⇨ 단독부장 근무기간을 2년 원칙으로 하고, 단독부장 2년 이상 보임자를 합의부장 보임 우선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안 및 앞선 기수의 부장판사들을 단독부장으로 보임하는 방안도 추진하여야 할 단계임
-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3년 동안 근무하는 상황 고려 필요 ⇨ 단독부장 2년 근무 후 합의부장 1년만 근무하고 타법원 전보되는 문제점 발생 [대법원 차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존 순환근무제도의 수정 적용 검토가 요망됨]

● 단독과 배석 사이의 사무분담 교류

- 기존의 사무분담 결정 기준인 기수, 연령보다 배석기간을 더 우선시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음 [이 역시 대법원 차원에서 검토 필요]

● 내규인 '서울중앙지방법원법관의사무분담에관한지침' 개정 필요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서울중앙지방법원법관의사무분담에관한지침
<p>제4조(사무분담의 확정)</p> <p>③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할 경우에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다음 각호에 정한 기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지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p>	<p>제2장 직급별 사무분담</p> <p>제4조(합의부의 재판장)</p> <p>① 제1심 합의부의 재판장은 사법연수원 기수가 앞선 법관으로 배치하고, 사법연수원 기수가 같을 경우 변형부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긴 법관을 우선하여 합의부장으로 배치하며, 위 기준에 의하여 경합할 경우 연령,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합의부장으로 보한다.</p>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서울중앙지방법원법관의사무분담에관한지침
<p>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판장인 법관 : 2년(다만, 형사 정식재판 청구사건 전담부 및 민사소액사건 재판부의 경우에는 각 1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 : 1년 <p>제4조의2(단독판사의 보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배석판사와 단독판사를 사법연수원 수료기수, 법관경력, 배석판사 근무기간, 나이 등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임한다. 법관 임용 전 법무관·변호사 기타 법률 사무에 종사하였던 법관은 임용 이후 최소한 4년 이상 배석판사로 근무한 이후 단독판사에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석·단독판사 보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p>제4조의4(합의부 재판장의 보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합의부 재판장을 부장판사 재직 기간과 종전에 부장판사로서 단독판사의 업무를 담당한 기간, 사법연수원 수료기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임한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부 재판장 보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소부의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u>사법연수원 기수가 앞선 법관</u>, 사법연수원 기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하여 배치하되, 사법연수원의 특정 기수에 치우치지 않도록 배려한다. 합의부의 재판장은 2년간 근속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관 개인의 희망과 적성, 전문성 기타 인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2년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p>제5조(단독판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판사는 <u>사법연수원 기수가 앞선 법관</u>, 사법연수원 기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하여 배치하되,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서 판결하는 단독재판부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관 경력이 3년 미만인 자는 단독판사로 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독판사는 각 업무분야별로 사법연수원의 특정 기수에 치우치지 않도록 안배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단독판사는 2년간 근속함을 원칙으로 하되, <u>변형부장과 신청, 소액, 정식재판청구사건전담, 약식명령전담, 영장전담</u>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간 근속하도록 한다. 다만, 전문재판부에 근무하는 법관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한 여성법관에 대하여는 출산휴가를 전후하여 신청단독 등에 따로 배치할 수 있다.

▣ 일반직 사무분담 문제 - ○○○ 전담법관 재판부에 배치된 ○○○ 참여관

- 비단 ○○○ 참여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연의 업무인 재판업무에 소홀하는 일반직이 더러 있음
- ○○○ 참여관의 경우 노조활동을 이유로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조서작성 등 재판업무의 사실상 태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 전담법관의 전임인 현재 ○○지법의 ○○○ 판사는 ○○○ 참여관에 대한 통제를 사실상 포기하였다고 함]



- ○○○ 전담법관이 인간적으로 호소하여 많이 개선되었으나 향후의 기대를 속단하기는 이름 [○○○ 전담법관은 살얼음판을 걷는 상태였다고 표현함]
- 2015. 7. 11.자로 현재는 소액의 ○○○ 전담법관 재판부에 배치되어 있음. 젊은 판사보다는 경험이 많은 전담법관에게 배치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것으로 보았음 [○○○ 전담법관에게는 미리 알려두었음]

■ 2016년 정기인사 운용방향

- 합의부(항소부 포함) 재판장 및 단독판사 보임 기준이 '사법연수원 기수가 앞선 법관'으로 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법관의사무분담에관한지침'을 2015년 하반기 판사회에서 개정할 필요 있음
- 위 내규 개정 이후 항소, 합의부 재판장 및 단독판사 모두 단독부장 및 배석판사로 서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보임을 하는 방향으로 운용함이 바람직

원세훈 사건 1심 판결 관련 분석 및 설명자료

1. 사건개요

▣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7 공직선거법위반 등

▣ 공소사실 개요

- 피고인, 3차장, 심리전단장, 사이버팀 팀장 및 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 (공동정범)
-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아울러 (국정원법위반)
-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 (공직선거법위반)
-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는 공직선거법위반(255조 3항 2호), 국정원법위반(18조 1항), 공동정범(형법 30조), 상상적경합(형법 40조)임
- 범죄일람표 기재 약 3년간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봄

▣ 2014. 9. 11. 판결선고

- 국정원법위반 대부분 유죄, 일부 무죄
 - 인터넷 찬반클릭 1,214건, 글댓글 2,125건, 트윗·리트윗 113,621건 유죄
 - 트윗·리트윗 673,077건 무죄 (이유무죄)
- 공직선거법위반 전부 무죄 (이유무죄)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2. 쟁점과 1심 재판부의 판단

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행위 : 유죄 인정

▣ 공소권 남용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

- 검사의 지속적인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3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것은 공소권 남용 아님

- 공소사실 자체가 개괄적 표시가 불가피하고,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

■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

- 인터넷 사이트 및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 117개 전부 인정됨
- 트위터 계정 1,157개 중 증거들에 의하면 175개 계정만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
- 나머지 982개 계정 명의로 작성된 트윗·리트윗 부분은 무죄

■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정보원법 입법취지나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한정적으로 제한
- 사이버 활동은 북한의 대남심리전 실태를 알리는 내용이 아니라 국정을 홍보하고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은 비판하는 내용에 해당
- 활동 방법도 신분을 감춘 채 일반인으로 가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글이나 트윗을 게시하고 찬반클릭 활동을 한 것인바, 이러한 활동을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작성·배포행위로 볼 수 없음

■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정보원이 수행한 사이버 활동의 내용은, ① 국책사업 및 국정성과를 홍보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 및 여당을 지지하고, ②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야당 및 정치인들을 반대·비판하는 활동임이 확인되므로, 이는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한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들의 공범 성립 여부

- 원세훈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됨
- 각종 회의에서 지시하는 사항 직원들에게 전달

- 일관되게 적극적인 국정홍보를 지시
-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 및 정치인을 비판
-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한미 FTA 체결, 세종시 사업 등 주요 정치적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홍보 지시

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개념

- 어떠한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의 구분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과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

■ 기존부터 계속 해 왔던 행위

- 이 사건과 같이 선거 시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특정 정책을 지지·반대하여 온 경우 그 정책이 선거 시기에 ‘선거쟁점’ 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 선거운동의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을 인정하기 부족함

- 원세훈의 전부서장회의 발언을 살펴보더라도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의 지시라고 볼 만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 오히려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명확히 지시한 사실만 확인됨
- 검사가 선거운동의 시작점으로 기소한 2012. 1.경은 제18대 대선 후보자의 윤곽조차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

- 기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국정홍보 취지의 사이버 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선거운동의 계획성이나 능동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
- 검사의 공소사실을 보면 트윗 및 리트윗 건수가 2012. 10. 이후 뚜렷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전부 무죄 (상상적 경합이므로 이유 무죄)

3. 재판부 판단에 대한 비판과 검토

가. 비판의 요지

- ▣ 정치관여 혐의가 인정되는데 선거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작위적인 결론이 아닌지
- ▣ 공직선거법 85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86조 1항 1호로 공소장변경 요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나. 정치관여 유죄, 선거운동 무죄 부분에 대한 검토

1) 결론

- ▣ 증거로 인정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의 문제임
- ▣ 1심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는 궁극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상급심(대법원) 판단이 나와야 할 부분임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구분되는 선거운동 해당 여부

- ▣ 유사한 구조의 평가가 김용관 사건의 항소심(2014노530)에서 있었음
 - 한편, 이 사건 재판부는 김용관 사건의 1심 재판부임
 - 김용관 사건의 1심에서는 권○○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음 (선거운동의 법리에 입각한 평가는 없었음)

- 김용판 사건 항소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구분되어야 함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운동(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목적성이 명백하지 않다면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음
 -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실관계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재판부는 당해 재판부가 판결한 김용판 사건의 상급심이었던 항소심 재판부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에 유사하게 적용한 것임

■ 김용판 사건 대법원 사건 계류 중 : 2014도7309

3) 관련 판례

■ 선거운동에 관한 판례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005도301)

■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구별에 관한 판례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 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본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라 함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006도9392)

■ 기존 정책홍보의 연속성과 선거운동에 관한 판례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 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하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냄이 없이 그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위에서 본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선거쟁점이 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결과적으로 그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당,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11도9243)

4) 검토

▣ **결국 이 부분은 구체적인 개개의 사실인정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인정된 사실을 평가하는 부분에 해당함**

-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국정원 내부에서의 각종 행위, 정치관여, 공범 등에 관한 사실을 전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였음
- 위 인정사실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의 문제임

▣ **1심 재판부는 인정된 사실관계가 엄격한 증명의 기준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위와 같은 재판부의 평가의 당부는 상급심이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다. 공소장변경 요구 부분에 대한 검토

1) 공소장변경 요구에 관한 학설과 판례

▣ **공소장변경 요구가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

- 학설 : 재량설, 의무설, 예외적 의무설
- 예외적 의무설이 통설임 :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나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원의 의무 (예 : 살인 무죄일 때 업무상 과실치사 변경요구)
- 판례 : 재량설

2) 이 사건의 검토

- 이 사건은 국정원법위반 부분과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이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되었음

- 국정원법위반 부분은 ‘정치활동에 관여’ 한 행위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8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 한편, 86조1항1호 위반은 죄명은 공직선거법위반이지만, 행위태양은 일정한 제한행위금지 위반임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 위 판례(2006도9392)에 나와 있듯이, 86조1항1호 위반은 죄명 자체는 공직선거법위반이지만, 행위태양은 ‘선거운동’ 불문하고 일정한 행위 자체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임

- ‘선거운동’ 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형도 경미함
- 86조1항1호는 오히려 국정원법위반과 유사한 행위태양으로 볼 것임
- 국정원법은 공무원 중에서도 국정원장 등에게 훨씬 가중된 법정형을 인정하고 있음(법정형 7년이하, 벌금형 없음)

- 법원으로서의 유사한 태양으로서 더 중한 국정원법위반을 유죄로 인

정하는 이상, 공직선거법 86조1항1호로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 전혀 아님

- 판례인 재량설뿐 아니라 통설인 예외적 의무설 의하더라도 문제 없음
- 더욱이, '선거운동'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는 쟁점인데, 재판부가 공소장변경 요구를 한다는 것은 심증을 노출하는 것이므로 불가함

원세훈 사건 1심판결 분석 및 항소심의 쟁점 전망

1.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인정 (1심 판결)

▣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

- 인터넷 사이트 및 커뮤니티, 블로그 등 사용계정 117개 전부 인정
- 트위터 계정 1,157개 중 175개 계정 사용인정, 982개 계정 불인정(무죄)

▣ 원세훈 지시내용 (2009. 2. 취임시부터 2013. 3. 퇴임시까지 계속)

- 세종시,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주택 정책, 복지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
- 대통령의 외교 실적, 경제 성과 등을 널리 홍보
-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야당이나 야권 성향 정치인에 대한 비방·반대

▣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 내용 중 특히 정치적인 부분

- 2012. 10.경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 관련, NLL 수호의 당위성 등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의원 및 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
- 북한 미사일 문제 관련, 과거 정권의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결국 북한이 미사일 등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특정 정치인 및 정당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
- 천안함 사건과 연평해전 관련, 대북 강경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관한 정부의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는 국회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

2. 쟁점에 관한 1심 재판부의 판단

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행위 : 유죄

▣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 여부

- 사이버 활동은 북한의 대남심리전 실태를 알리는 내용이 아니라 국정을 홍보하고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은 비판하는 내용에 해당
- 법이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국내 보안정보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 제9조 제2항 1, 2호¹⁾에서 금지한 정치관여행위에 해당

- 국책사업 및 국정성과를 홍보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 및 여당을 지지
-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야당 및 정치인들을 반대·비판하는 활동

▣ 피고인들의 공범 성립 여부

-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지시와 활동 인정됨

나. 공직선거법위반 : 무죄

1) 전제된 법리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개념

- 어떠한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²⁾

1) 제9조(정치 관여 금지)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해당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구분되는 개념(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³⁾**

■ **기존부터 계속 해 왔던 행위**

- 선거 시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특정 정책을 지지·반대하여 온 경우 그 정책이 선거 시기에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선거쟁점’ 이 되었다고 하여 그에 대한 지지·반대활동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에 관한 일반적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 **국가정보원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상호관계**

- 선거운동은 특정한 유형만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선거운동의 행위태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다만, 행위에 더하여,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주관적인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날 것을 요함
 -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목적이 특정한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선거행위에 해당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한 재판부의 평가(사실의 인정)

■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정황사실(피고인 불리)**

- 제18대 대통령선거 시기 즈음에도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 성과 등을 홍보하는 글을 작성 및 게시
-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는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글

3)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본조에 해당된다

을 작성 및 게시

- 제18대 대선의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 등과 그들의 소속 정당에 대한 반대·비방 취지의 글도 상당수 포함

- 앞서 인정한 사이버 활동 내용 중 특히 정치적인 부분 참조

■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정황사실(피고인 유리)

- 원세훈의 전부서장회의 발언을 살펴보더라도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의 지시라고 볼 만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
 - 오히려 원세훈이 “대선정국을 맞아 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 “전직원들이 선거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 등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명확히 지시
- 선거운동은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이어야 하는데, 검사가 선거운동의 시작점으로 기소한 2012. 1.경은 제18대 대선 후보자의 윤곽조차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
- 기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국정홍보 취지 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선거운동의 계획성이나 능동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
-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지시로 볼 수 있는 “이슈 및 논지” 에도 선거 관련된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
- 통상적인 선거운동의 경우라면,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검사의 공소사실을 보면 트윗 및 리트윗 건수가 2012. 10. 이후 뚜렷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 합리적 의심⁴⁾이 없는 정도의 증명

-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

4)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⁵⁾

▣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사실이 있더라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존재하는 이상 선거운동의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을 인정하기 부족함

- 사이버 활동이 제18대 대선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위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의 지시를 하여 그에 따라 선거운동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3. 항소심 재판의 쟁점

가. 선거운동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 현재 인정된 구체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선거운동의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이미 구체적 사실관계는 증거에 의하여 상당히 밝혀져 있음
-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할 것임

▣ 추가적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

-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이메일 첨부문서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따라 추가적 사실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

- 심리전단 직원 김○○이 자신에게 쓴 이메일에는 ‘시큐리티’ 라는 파일

5)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231 판결)

이 첨부되어 있음

- 위 파일에는 직원들이 사용한 다수의 트위터 계정이 기재되어 있음
- 1심 재판부는 위 ‘시큐리티’ 파일을 전문증거로 보고 원작성자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능력 부인
- 그 결과 다수의 트위터 계정이 인정되지 않았음
- 항소심에서 위 다수 트위터 계정의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 사실 관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음

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죄의 인정 여부

■ 1심에서는 공소사실이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이었음 (선거운동)

- 애당초 고발장에는 제58조와 제86조가 함께 있었다고 함

■ 검찰이 제86조 위반으로 (예비적) 공소장변경을 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여부를 새롭게 판단하여야 함

■ 한편, 제86조제1항제1호 위반 행위태양은 ‘특정한’ 행위금지 위반임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2010.1.25>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조문 제목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님
-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의 ‘특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선거운동의 목적성을 불문하고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임(2006도9392)

- 이 사건의 경우 제86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려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함
 - 이 부분은 1심 재판의 심판대상이 아니었음
 - 현재 1심 판결문 상으로는 ‘대통령의 업적 홍보’와 ‘야당후보 비방’에 관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으나, 반대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의 업적 홍보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이 부분에 관한 검찰의 추가적 입증이 필요할 것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1. 검토 배경

■ 2. 9.(월) 14:00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선고 예정

- 2014. 9. 11. 1심 판결 선고 ⇨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무죄, 국정원법 위반 부분 유죄
 - 재판장 이○○ 부장판사: 연수원 21기, ○○대, 서울 ○○고
- 쌍방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호로 항소심 계속 중
 - 재판장 김○○ 부장판사: 연수원 20기, ○○대, 대전 ○○고
 - 주심 김○○ 판사: 연수원 24기, ○○대, 광주 ○○고
 - ※ 해당 재판부는 최근 나꼼수 김○○·주○○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 선고

■ 선고 결과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과 **대응 방향** 수립 필요

- 대내외적으로 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마련

2. 최근 정세 분석

가. BH·여권

■ 국정 난맥상 계속 ⇨ 지지율 하락, 조기 레임덕 가능성 제기

-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증세 논란 등으로 국정 난맥상 계속
 - 문건 유출·비선 국정 개입 논란 ⇨ 민정수석 교체 등 인적 쇄신 단행하였으나, 국무총리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하여 또다시 이상 기류 발생
 - 연말정산·건강보험 개혁 논란 ⇨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제공
 - 경제·통일 골든타임 선언 ⇨ 난국 타개를 위해 정치적 논의는 자제·기피
- 신임 원내대표 선출 ⇨ 朴心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레임덕 우려
 - BH와 새누리당 사이에 당·청 관계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신경전

- 2. 13. 께 소폭 개각과 BH 정무 특보단 인선 예정

- 해양수산부장관에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 허남식 前 부산시장, 통일부장관에 권영세 주중 대사 등 거론
-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진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 ⇨ 마땅한 후임을 찾지 못함, 인적 쇄신 마무리되면 퇴진할 것이라는 전망 여전히

- 원세훈 1심 판결 당시 반응 ⇨ **환영·안도**

- BH ⇨ 비공식적으로 사법부에게 감사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후문
- 새누리당 ⇨ 큰 짐을 덜었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 야당에 역공
- 공식 논평 ⇨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야당의 실패한 대선 개입 정치 공작이었음이 명백해졌다...대선 불복으로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우롱한 새정치연합은 이제라도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 야권

- 새정치연합 신임 당 대표 선출 ⇨ **혼탁·과열로 분열 양상**

- 문재인 신임 당 대표 당선 ⇨ 對 BH 공세 강화
- 수락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 선포”
- 한편, 막판 ‘룰 변경’ 논란 등 **계파간 대결 분위기**로 후유증 우려
- 박지원 후보 ⇨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 문재인 대표와 박 후보의 득표율 45% vs. 42% ⇨ 격차가 3% 불과하여 후유증도 극대화
- 봉합을 위한 시간, 설 연휴 등으로 한동안 활발한 활동은 어려울 듯

- 원세훈 1심 판결 당시 반응 ⇨ **비판**

- 새정치연합 ⇨ 거세게 비판
- 공식 논평 ⇨ “재판부는 정치 개입은 맞는데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모욕했다...헌정 질서 교란행위에 면죄부를 준 수치스러운 판결”

다. 언론기관

■ 진보 언론 ⇨ 대법원에 비판적 논조 유지

- 특히 대법관 청문회를 앞두고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결사항전 분위기

■ 보수 언론 ⇨ 그다지 우호적인 분위기 아님

-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대한 싸늘한 분위기
- 최근 최○○ 판사 사건 등으로 인하여 비판적 논조 계속

■ 원세훈 1심 판결 당시 반응 ⇨ 진영 논리에 따라 엇갈림

- 진보·중도 언론 ⇨ 판결의 논리에 의문 제기
 - 특히 최근 1심 재판장이었던 이○○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임 된 것에 대하여 비판적 보도 ⇨ 한국일보, 로이슈, 아시아경제 등
- 보수 언론 ⇨ 결과적으로 정국 혼란 불러온 검찰 비판

라. 사법부 내부

■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예의 주시

- 선고 다음날인 2. 10. 전후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가 최대 관심사
- 박○○ 대법관 후보자의 전력 논란으로 인한 내부 불만 축적 중
 - 대법관 후보자가 역사적 사건에 연루되어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 ⇨ 청문회 과정에서 상황 전개에 따라 공개적 표출 가능성

■ 원세훈 1심 판결 당시 반응 ⇨ 강한 내부 논란 발생

- 김○○ 부장판사 ⇨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표명하여 논란 촉발
 - 판결에 대한 여론 관심 증폭 + 법관 사회의 분열에 선정적 관심마저 집중
 - 이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하지만, 의외로 적지 않은 수의 법관들이 김○○ 부장판사의 게시물에 대하여 심정적 동조를 보내었음

3.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

가. If 항소기각 판결[1심 결론 유지] ⇨ 파장 최소화

■ BH·여권 ⇨ 외부적으로 덩덤한 반응, 내부적으로 안도 예상

- 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이므로 큰 관심 표명하지 않을 가능성
- 상고심 결론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야권 ⇨ 비판 태도 유지 내지 덩덤한 반응

- 1심 판결 선고 시와 마찬가지로 비판하는 입장 표명할 것
- 다만, 전당대회 바로 다음날이므로 그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언론 ⇨ 1심 판결 당시 분위기 유지

- 1심의 결론이 유지된 것이므로 큰 기사거리로 취급하지 않을 가능성
- 다만, 1심 판결 당시의 상당한 논란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는 다루어질 듯

■ 사법부 내부 ⇨ 큰 갈등이 촉발되지는 않겠으나 기존 불만 세력의 불만은 심화 가능성

-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1심 판결 당시와 같은 논란·갈등 양상이 재발되지는 않을 것임
- 게다가 금주 내 법관 정기 인사가 이루어지면 관심은 크게 분산·약화될 수 밖에 없음
- 하지만, 1심 판결 당시 불만을 가졌거나 그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을 가졌던 구성원들은 불만이 더욱 응축·심화될 가능성 있음
- 박○○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한 불만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표출 여부가 결정될 것임
- 다만, 김○○ 부장판사 징계로 인한 교육 효과에 따라 실제로 불만 표출에 나서는데에는 상당히 조심·자제할 것으로 보임

나. If 파기·공직선거법 유죄 판결[1심 결론 반복] ⇨ 상당한 파장

■ BH·여권 ⇨ 극심한 곤경에 처함

- 정권의 정당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됨
 - 이미 최근 지지층의 지속적 이탈로 사실상 “지지율 제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아야 함 ⇨ “현재 남아있는 20% 후반 정도 비율의 지지는 박정희 향수와 경제 개발 세대의 자부심에 의한 것 불과”[안○○ 명예교수, 2. 4. MBC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신동호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 내용]
 -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 탄생 과정의 정당성 자체마저 의심 ⇨ 박 대통령이 기댈 수 있는 권위는 전무한 상태 초래
 - 게다가 야권은 전당대회를 통해 확보한 새로운 당 대표 체제의 선명성·언론 주목도[이른바 컨벤션 효과]와 최근 BH·여권의 곤란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 명절 기간 동안 지지 기반을 확장·확보하기[이른바 차례상 효과] 위하여 전력투구할 것임[이미 ‘전면전 선포’] ⇨ 유례없는 강공 비판을 감당해야 하는 큰 부담
- 국면 전환 조치의 방향이 사법부를 향하게 될 가능성 큼
 - [시나리오①: 직접적·적극적 조치] 전면적 사법개혁 시도
 - 적극적 가능성 ⇨ 최근 발생한 최○○ 판사 사건, 대구 유 모 판사 사건 등으로 인하여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 국민·언론 여론 존재, 전교조 집행정지 사건 등을 통하여 사법부에 대한 BH의 불만은 이미 상당히 누적된 상황
 - 소극적 가능성 ⇨ 올해를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선언하는 등 경제 올인 정책 예정, 최 모 판사 사건 등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만으로 갑작스레 사법개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소 뜬금없음, 사법부에 대한 보복성 개혁이라는 비판 우려
 - [시나리오②: 간접적·소극적 조치] 중점 추진 사법정책 반대, 사법부 예산 편성 비협조
 - 적극적 가능성 ⇨ 특히 대법원의 중점 추진 사법정책인 상고법원안의 경우

설치 시 김○○ 부장판사와 같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상고법원 법관의 중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연상 작용을 일으켜 극도의 불신을 받게 될 것임, 사법부에 대한 불만 제기 시 예산 편성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BH의 전통적인 사법부 견제 방법이었음

- **소극적 가능성** ⇨ 간접적·소극적 보복 조치에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다만, 여론의 주목을 피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은 있음

- **야권** ⇨ BH·여권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 예상

- 정권을 향한 총력 비판에 나설 것임
 - 특히 문재인 후보가 당 대표에 선출될 경우 ‘지난 대선의 직접 피해자’로서 ‘정당한 보상, 원상복구’의 이미지·명분을 구축하려 할 것임 ⇨ 직접적으로 대선 불복 운동을 떠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차기 대선 승리의 역사적 개연성·정당성을 국민의 뇌리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 게다가 야권에 유리한 결론은 향후 대법원 판결 시까지 허락된 한시적 상황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임 ⇨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劇的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임
- 사법부에 대하여는 다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

- **언론** ⇨ **진영** **막론**하고 사법부 **비판** 예상

- 보수 언론 ⇨ 판결 결론에 관한 불만을 정면으로 표출할 것
 - 김○○ 부장판사를 징계한 것을 들먹이며 항소심 판결을 자가당착·모순적인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 있음
- 진보 언론 ⇨ 판결 결론에 대해서는 환영할 수 있으나, 김○○ 부장판사 징계의 문제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큼
 -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한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것임

- **사법부 내부** ⇨ **큰 갈등** 촉발 가능성

- 상당한 내부 갈등 발생할 것임

- 김○○ 부장판사 징계 당시에 수면 하에서 법관들 사이에 상당한 논란·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판결 결론이 뒤집히면 과연 김○○ 부장판사의 견해 표명이 비난 가능성 높은 것이었는지, 징계 수위가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필연적일 것임
-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이○○ 부장판사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을 놓고서도 의혹을 제기한 바 있음 ⇨ 법원노조로부터 이에 관한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1심 판결에 대한 불만 또는 최근 대법관 후보자 논란에 대한 불만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음
- 1심 판결에 동조하지 못하던 세력은 항소심 판결을 통하여 회복·치유되었다고 생각할 것임 ⇨ 공식적 문제 제기 등 행동에 나설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 있음

4. 대응 방향

가. If 항소기각 판결[1심 결론 유지] ⇨ 사법부 내부 분위기 결속 중심

- **BH·여권** ⇨ **별다른 조치 불필요**
- **야권** ⇨ **별다른 조치 불필요**
- 비판적 입장이 그리 강하지도, 오래 가지도 않을 것임
- **사법부 내부** ⇨ **불만·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 필요**
- 코트넷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비판적 게시 글 작성·등록 여부 지속적 확인
- 특히 코트넷운영위원회 간사(정보화심의관)는 당분간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 큼 ⇨ 문제 있는 글이 게시될 경우 즉시 임시조치 여부를 검토·집행하여 파장을 최소화하여야 함
- 법관 정기 인사는 최대한 조속한 시점에 실시할 필요 있음

- 정기 인사 발령 시 새로운 임지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 등으로 인하여 **법관들의 관심이 크게 분산될 수밖에 없음**
- 금주 주말부터는 사실상 설 연휴 기간에 진입 ⇨ 그 전까지 4~5일이 분수령이 될 듯함
- **이상 기류 발생 시에는 각급 법원장 등을 통하여 여론 수습 조치**
-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로 각급 법원장에게 협조 메일 발송

나. If 파기·공직선거법 유죄 판결[1심 결론 반복] ⇨ BH·여권 대응 중심

■ **BH·여권 ⇨ 신뢰 관계 유지·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실시**

- **①우선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
 - 상고법원안에 직접 미칠 부정적 영향[상고법원 법관 구성과 상고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
 - 제시 가능한 안 ⇨ 상고법원 법관 보임 시 국회 동의 또는 인사청문회 절차 실시,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확대[정치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은 반드시 대법원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함], 대법원 사건 심사·특별 상고 등의 과정에 법무부장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
- **②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관심 사법 현안 신속 처리**
 - 전교조 집행정지 인용 결정 후 BH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 ⇨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한 것으로 입장 정리
 - 지금까지도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만일 대법원의 결론이 재항고 인용 결정이라면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법부에 대한 불만 완화 효과 + 원세훈 사건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암시 제공 효과
- **③본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조속한 시점에 선고**
 - 상고심을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여 만일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는 최대한 조속히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불만·오해 기간 최소화

● ④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비공식적 라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입장 전달

-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에 **법무비서관실** 등 적당한 비공식적 라인을 통하여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설득 절차를 거침
- 특히 위 ①, ②, ③ 조치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간접적으로 미리 안내하는 방법을 검토 가능함

● ⑤전면적 사법개혁 논의가 진행되면 ‘경제도약을 위한 사법인프라 혁신플랜’ 논의로 국면·논의 방향 전환을 노력

- 우선 지금은 전면적 사법개혁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설득
- 사법부 변화에 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면 경제 회복에 사법부가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임을 건의 ⇨ BH가 주도하여 정권의 성과·업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국면 전환 시도



■ **야권** ⇨ **별다른 조치 불필요**

■ **사법부 내부** ⇨ **앞서 항소기각 시의 대책 + 김○○ 징계·이○○ 승진 관련 논란 대비**

● 앞서 항소기각 시의 대책은 이 경우에도 유효함

- 코트넷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비판적 게시 글 작성·등록 여부 지속적 확인
- 법관 정기 인사는 최대한 조속한 시점에 발표할 필요 있음
- 이상 기류 발생 시에는 각급 법원장 등을 통하여 여론 수습 조치

-
- 나아가 이 경우에는 김○○ 부장판사의 징계와 이○○ 부장판사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에 대한 불만·논란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대비가 필요함
 -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조치에 대한 논란 ⇨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안 [원세훈 사건] 자체에 대하여 취한 정치적 견해·입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법관이 현재 계속 중인 다른 법관의 담당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데 [법관 윤리 문제]에 대한 것임 ⇨ 이상 기류 발생 시 각급 법원장 등을 통하여 개별 법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가 전달·설명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이○○ 부장판사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에 대한 논란 ⇨ 직접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음, 오히려 논쟁을 불필요하게 촉발·확대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식 있는 법관이라면 법원의 인사가 그러한 취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임 [끝]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1. BH

■ 판결 선고 전 동향 ⇨ 촉각을 곤두세움

- BH의 최대 관심 현안 ⇨ 선고 전 ‘항소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
- 법원행정처 ⇨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재판 결과에 관하여서는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을 알림
- 위와 같은 내용 그대로 민정 라인을 통하여 보고됨

■ 판결 선고 후 동향 ⇨ 내부적으로 크게 당황, 외부적으로는 침묵 속에 이완구 청문회 주력

- 전반적 분위기 ⇨ 크게 당황하며 앞으로 전개될 정국 상황에 관하여 불안해하는 상황
-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
- 이에 대하여 곽○○ 법무비서관 ⇨ 전원합의체 회부는 오히려 판결 선고 지연을 불러올 가능성 있음을 피력
- 법원행정처 ⇨ 법무비서관을 통하여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함
- 법무비서관 ⇨ 법원행정처 입장을 BH 내부에 잘 전달하기로 함, 그리고 향후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 함
- 아직 “대응” 방향에 관하여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기본적으로 ‘판결 자체에 대한 대응 방법’이 마땅한 것이 없다는 것이 민정 라인의 답답한 입장인 것임
- 단적으로, 유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검찰을 채근할 수도 있겠으나, 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 변호사를 채근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것
- 게다가 민정 라인은 오늘 당장 닥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더욱 급한 현안임
- 일단 법무비서관실로서는 청문회 전후로 이 사안에 대한 민정수석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2. 여야 각 당

■ 새누리당 ⇨ 유감

- 김○○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 “매우 유감스러운 일...국정원은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게 심기일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새정치연합 ⇨ 사필귀정

- 문재인 대표 ⇨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확인된 것...남북 대화록 불법유출 악용 등과 함께 종합해 보면 국가기관의 전 방위적 대선 개입이 이뤄진 것...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 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사필귀정...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판결...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박근혜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
- 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 ⇨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확인해 준 판결...‘재판 결과를 보자’ 하던 박 대통령은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3. 언론 동향① [선고 직후~다음날 오전]

-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팩트 전달에 그침
 - 다른 현안이 많고, 280쪽이 넘는 판결문에 대한 분석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으로 보임

가. 보수 성향 언론

■ 조선일보 ⇨ 침묵

- 총 27건의 인터넷 기사 게재 ⇨ 기사 수 자체는 많은 편
- 그러나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게 관련 사실을 내지 않음
 - 조선일보가 실은 3편의 사실 ⇨ ‘대통령, 정치권‘복지·증세’ 논의 타박할 때 인가’, ‘문 대표, 거친 말 앞세우면서 ‘국민통합’ 이룰 수 있겠냐’, ‘넥슨·엔씨, 세계시장 팽개치고 안에서 진흙탕 싸움만 해서야’ 등
 - 판결 내용에 대한 보도, 여야 정치권의 반응, 법정 안팎 스케치, 원 전 원장과 변호인의 판결에 대한 입장 등 관련 ‘팩트’를 건조하게 전달했을 뿐임
- 유일하게 판결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엿볼 수 있는 기사 ⇨ 5면 하단 ‘검찰 안에서도 선거법 적용 논란…최종 판단은 대법 몫’
 - 그간 선거법 위반 적용을 둘러싼 채 전 총장과 황교안 장관의 갈등, 또 검찰 내부 갈등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뒤 “상고가 확정된 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 중앙일보 ⇨ 신중한 가운데 ‘국정원’으로 비판의 화살을 돌림

- 총 6개 인터넷 기사 게재
- ‘1,2심 엇갈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이란 제목의 사실 ⇨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국정원도 과거 스스로 권위를 훼손해 불신을 자초한 점을 인정하고 과감한 개혁 작업을 벌여야 할 것”

■ **동아일보** ⇨ 좀 더 강하게 **국정원 개혁 촉구**

- 총 10개 인터넷 기사 게재
-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국정원 어두운 과거와 절연하라’는 제목의 사설 ⇨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 2심의 법리 판단이 달라진 만큼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이고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된 2심 판결에 대해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은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

나. 진보 성향 언론

■ **한겨레** ⇨ **VIP 정면 비판**

- 총 10개 인터넷 기사 게재
-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의문 던진 ‘원세훈 판결’이란 제목의 사설 ⇨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약칭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원세훈 전 원장의 범행 동기나 배경, 박근혜 후보 쪽의 인지 여부 등 더 확인돼야 할 대목이 여럿 남아 있다. 박 대통령도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본다”

■ **경향** ⇨ **VIP 정면 비판**

- 총 28개 인터넷 기사 게재
-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청와대가 답할 때다’라는 제목의 사설 ⇨ “박 대통령이 불법 대선개입의 ‘수혜자’임이 드러난 이상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을 반대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물러나야 마땅하다.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지했는지등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다. 방송·인터넷 언론

■ KBS, MBC, SBS, YTN

-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1, 2심 **판단 근거 소개·분석**하는 기사 위주
 - 최근 무죄를 확정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 언급
 - 김용판 사건 축소 의혹, 채동욱 사퇴, 수사팀 항명 파동 등을 다시 소개

■ JTBC

- 기사 게재 **총 9개** ⇨ **판단 근거 소개·분석**에 초점, **여야의 반응** 소개
 - 그동안의 검찰 수사 과정 상세히 설명하며 수사 외압과 논란에 대해 조명,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기사

■ TV조선, 채널A

- 분량이 다른 방송매체에 비해 **적은 편** ⇨ 항소심 결과 위주로 전달, 기사 게재 수 **TV조선 5개, 채널A 4개**

■ 뉴시스

- **총 26개** 기사 게재
- 기사 대부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설명, 여야의 주장과 모습 많이 다뤄, 김○○ 부장판사에 대한 과거 판결과 인물 조명

■ 뉴스1

- 판결 결과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위주의 **중립적인** 보도
 - 여야의 주장과 모습, 참여연대, 새사회연대 등 시민단체의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주장 게재, 선거법 유죄판결에 대한 검찰의 분위기 게재

■ 노컷뉴스, 오마이뉴스

- **노컷뉴스** ⇨ 현 정부의 **정통성**에 대해 언급
 - 야당의 주장(박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해)을 통해 정통성에 대한 시비
- **오마이뉴스** ⇨ **판결 결과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위주로 보도

4. 언론 동향② [다음날 오후~2015. 2. 11.현재]

○ 판결에 대한 분석 기사가 보도되고 있음

- 1, 2심 판결에 대한 비교·분석, 향후 미칠 영향에 관한 분석

가. 보수 성향 언론

- **조선일보** ⇨ 원세훈 ‘선거 개입’ 지시했나...1심 “확인 안 돼” 2심 “궁극적 책임” / ‘원세훈 선거법 위반’, 대선 결과엔 영향 없어
 - “같은 사실 두고 1심은 엄격하게, 2심은 폭넓게 해석...1심은 ‘힙쓸리지 말라’는 지시...‘선거운동 말라’고 판단...2심은 ‘직원들 활동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는 취지로 봐”
 - “1심서 배제한 트윗 수십만 건...2심에선 증거로 추가 채택”
 - “지난 2012년 대선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중앙일보** ⇨ ‘트위터 계정’ 첨부 파일 증거능력 쟁점
 -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가능성도...”

나. 진보 성향 언론

- **한겨레** ⇨ 원세훈 유죄, 1심에서 배제한 증거가 ‘결정적 증거’
 - “국정원 트위터팀 김 아무개 이메일 첨부 파일 2개 증거 채택하자 ‘선거 개입’ 실제 분명해져”
 - “트위터 활동 내역·팀원 계정 목록...당사자 부인에도 ‘통상문서’로 판단”
- **경향** ⇨ 대법원이 ‘유죄’ 확정하면 대선 결과 영향 있을까
 - “지난 대선에 대한 법적 다툼은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하지만 시효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3년 1월 초 한 모 씨 등이 제기한 ‘18대 대선 무효 확인 소송’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은 “전산운영프로그램인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수개표가 누락됐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5. 사법부 내부

■ 소장 법관

- 특히 1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고민하던 법관들은 항소심 판결 내용에 **수긍**하는 입장이 많음

○ 아래 내용은 최근 개설된 Daum 판사 카페에 익명으로 올라온 게시 글들임

- 결국 실형 3년이군요^^
- 오오!!!
- 징역 3년 법정구속...**속이 시~원하다!!**
- 실형 나왔네요!
- **간만에 속이 확 풀리는 소식이네요.**
- **꼭 내가 형사피해자이고 가해자한테 실형 선고된 것 같은 기분예요.**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요 : 이걸 애교섞인 과장임^^
-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우울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게 다 잊혀지고 **막 기분이 좋아져요.!**
-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 **이처럼 당연한 말을...**
- 박수를 보냅니다.
- **김○○ 부장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 저도 김○○ 부장님의 글이 생각났어요.
- (두리번) 선배님~ 이러면 어느 것이 "튀는 판결" 인가요... **종래 관념으로는 1심인 것 같은데, 윗분들 눈치를 보면 항소심일 것 같기도 하구...** 나는 이 것(판사) 하나 뿐인데... "요즘 젊은 판사들의" 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에 비추어 두 분의 나이를 비교해야 하는지... 아... 어렵다. 휘리릭~
- '튀는 판결'이라는 워딩 자체가 편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파동에 관한 pd수첩 보도관련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튀는 판결이라고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죠. 상급심에서 결론이 유지되었는데도요
- **판사님들 의견이 같네요. 밥조도 같네요**
- 이게 **상고심에서 깨지지 않길** 기도합니다
- 저도 **상고심에서 깨지지 않길** 기도합니다
- *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규범이 헌법적 의미 등에 대한 고려 필요성 : 위 금지규범이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관여에 따른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한 국민의 강력한 규제 의사가 반영되어 입법된 것임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공직선거법의 의미

및 그 적용 요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위 규정이 입법된 목적 및 공직선거법이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헌법규정의 정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문제와 정답은 "헌법"이었던 듯 !!

- 아~ **판사답다...**

-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판결과를 전해들은 뒤 "뭐 저런 판사가 다 있나?"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어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 어제 재경지역 검찰 동기들과 송별회식하면서 들은 얘기와는 좀 다르군요 ㅎㅎ

↳ 그런 검사도 있겠죠. ㅎㅎㅎㅎ 그렇지만 안그런 검사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 "고위 관계자"들 얘기죠...검사장 이상이거나 검사장 승진을 바라보는 사람들 마인드는 좀 다른 듯...

■ 코트넷 자유게시판

- 판결 선고 기사를 전제한 글과 ‘판사 김○○’의 제목으로 재판장을 두둔하는 글이 게시되었음

- 각 글에 댓글이 10개 이상 달렸으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음

6. 향후 대응 방향

■ 판결 결과 분석 필요

- 항소심 판결과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 ⇨ 신속 처리 추진

- 기록 접수 전이라도 특히 법률상 오류 여부 면밀히 검토 ⇨ 공직선거법 제 270조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3개월] 최대한 준수하여 신속 처리

◆ 상고심의 쟁점 예상

■ 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일 듯

-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너무나도 구체적임
-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항소심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단순히 ‘전제 법리’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비판
 - 법리 문제를 떠나, 항소심 판결의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구체적임

■ 이른바 ‘선거 트윗’과 ‘정치 트윗’의 구별 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선거무효소송**

■ **소 제기 기간 도과 ⇨ 新訴 제기는 불가능**

- 공직선거법 222조 ⇨ 대선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후보자·정당), 선거 일로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

■ **다만, 이미 제기된 '제18대 대선무효확인소송' ⇨ 영향 미칠 수 있음**

- 대법원 2013수18호 사건
- 원고 측에서 이미 원 전 원장 사건 관련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했음

■ **향후 정무적 대응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계속하여 수세적 입장을 취하는 방안 vs. 수세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하는 방향
 -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 ⇨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짤 수도 있음
 -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 ⇨ 다만, 역풍 가능성이 극히 우려되므로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끝]



2015. 10.

원세훈 사건 환송 후 당심(서울고법 2015노1998호) 심리방향

- 제7형사부 재판장(김○○ 고법부장)은 이 사건이 배당된 직후부터 **1심, 환송 전 원심, 상고심 판결과 기록, 법리 등을 검토해 왔고, 그 결과 쟁점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였음**
- 현재 **공판준비기일을 2회 진행**하였고, **향후 2015. 10. 16. 10:00 공판준비기일이 1회 예정되어 있으며, 추가로 공판준비기일을 1회 더 진행한 후(10. 23. 또는 10. 30.) 11월에 공판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재판장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증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만 하고 본안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공판·증거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1심과 환송전 당심에서 쟁점화되지 않은 공모관계에 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난 이상 그에 대한 재심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쟁점은 대략 다음과 같음(공판준비기일에서 구두로 개시한 내용이므로, 향후 그 밖의 쟁점이 추가될 수 있음)
 - 원세훈 피고인의 국정원장 취임시기⇒ 2009. 2. 12.(목) 오후 7시
 - 공소사실에 국정원 직원이 원세훈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개시한 것으로 적시된 시기⇒ 2009. 2. 14(토)
 - 공판·증거기록상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원세훈 피고인의 직무상 발언은 2009. 5. 15. 전부서장회의에서 이루어졌으나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이 정치관여지시라고 볼 수 없음. 다만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최초의 직무상 발언시기는 2010. 1. 20. 인데, 이를 기초로 2009. 2. 14. 이후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 작위적 사실인정이라는 것이 재판장의 입장임
 - 공판검사는 재판부가 제1심과 환송전 당심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았고, 전혀 수사대상이 되지 않은 위와 같은 새로운 정황을 심리하는 심리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함



- 대내적 공모관계에 관한 입증구조와 입증정도
- 국정원법상의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와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에 관한 해석
- 국정원법 제3조에서 정한 국정원(직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해석
- 원세훈 피고인의 국정원장 지시강조말씀이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해당하는지 등

■ **석명준비명령은 3회 있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음**

- **8. 4.자**⇒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증거와 트위터 계정을 정리하고, 찬 반클릭, 댓글 게시, 트윗 또는 리트윗 행위의 사실인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
- **9. 30.자**⇒ '변호인들에게는 위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과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하는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검사에게는 위 추가 증거신청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
- **10. 6.자**⇒ '검사에게는 의견서, 환송 전 원심판결 등 심리과정에서 언급되거나 관련 쟁점이 논의된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판결들과 현재 결정문에 관한 서증제출 준비를, 쌍방에게는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명하고', 공판준비기일에 대한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공소 제기된 처벌 규정, 검찰청법 등 법률, 이 사건에 관한 심급별 판결, 공판조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서 중 일부, 일부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에 대한 검토를 명하는 취지

■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향후 심리 범위와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움. 다만 재판장이 법정에서 관련 법리와 입증구조, 증거가 충분한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 반복적으로 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간단히 심리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보석결정도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보석결정 관련 내용**

- 2015. 2. 9. 환송 전 항소심에서 최초 구속이 되었으므로, **최종 구속 만료일은 2016. 2. 8.임**
- 한편,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2015. 7. 23. 구속기간 갱신결정(구속 만료일



2015. 8. 8.)을 하였고, 2015. 9. 21. 구속기간 갱신결정(구속 만료일 2015. 10. 8.)을 하였음

- 그런데 환송 후 항소심이 2015. 10. 6.자로 보석허가결정을 함으로써 2015. 9. 21.자 구속갱신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됨

재판장과 주심판사(최○○ 고법판사, ○○기)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세훈(전 국정원장) 사건 개요

1. 사건진행 개요

- 사건 : 서울중앙 2013고합577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 재판부 : 형사21부(재판장 : 이○○ 부장판사)
- 공소제기(불구속) : 2013. 6. 14. (알선수재 사건으로 구속, 실형선고)
- 진행 상황 : 공판절차 계속 중
 - 2013. 8. 26.부터 2014. 6. 30.까지 36회의 공판기일 진행
 - 2014. 7. 14. 37회 공판기일 변론종결
- 2014. 9. 11. 판결선고 예정

2. 공소사실

가. 당초 공소장

▣ 이 사건 공소장은 다음과 같이 7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제1항 :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 제2항 : 국정원의 직무범위
- 제3항 : 피고인의 국정원 운영 방침
- 제4항 : 사이버 국정홍보의 강화와 심리전단의 확충
- 제5항 :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지시
- 제6항 : 심리전단 직원들의 구체적인 범행 내역
 -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여명의 직원이
 -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와 같이 총 5,694회에 걸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

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함

-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계 범죄행위를 실행함과 아울러
-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 범죄행위를 실행함

● 제7항 : 결어

- 피고인, 3차장, 심리전단장, 사이버팀 팀장 및 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
-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계 행위를 함과 아울러
-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함

●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는 공직선거법위반(255조 3항 2호), 국정원법위반(18조 1항), 공동정범(형법 30조), 상상적경합(형법 40조)임

- 범죄일람표 기재 약 3년간의 5,694회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봄

나. 제1차 공소장변경

■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의하여 추가된 범죄사실은 위 '제6항의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트위터를 이용한 범죄사실'**

- 사이버팀 직원 김○○이 2012. 9. 1. 트위터 계정에 '민주, 안철수, 보조금 152억 받으려 눈속임 정당 만드나...'라는 글을 게시함을 비롯하여, 2012. 9. 1.부터 2012. 12. 18.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트위터에서 5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 **공소장 변경 허가**

- 2013. 10. 30. 공소장변경 허가결정
-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인정" → 공소사실 자체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지, 유무죄 또는 범죄성립 가부 판단을 한 것 아님

다. 제2차 공소장변경

■ **공소사실 제6항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활동에 의한 범죄 실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철회, 변경 및 추가함**

- 범죄일람표(1), (2), (3), (4)를 일부 축소 및 대체
- 트위터 관련 범죄일람표(5)의 55,689건을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해당 범죄일람표 (5) 647,443건과 정치관여(비선거운동) 범죄일람표 (6) 562,785건으로 교체 및 추가
- 트위터 관련 선거운동 건수를 55,689건에서 647,443건으로 변경함

■ **공소장 변경 허가**

- 재판부 2013. 11. 28. 제2차 공소장 변경 허가결정
-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인정”
- 변호인 측의 공소사실 자체의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는 “최종 판단에서 고려할 것”

라. 제3차 공소장변경

■ **공소사실 제6항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활동에 의한 범죄 실행 부분'을 다시 축소함**

- 트위터 관련 범죄일람표 (5)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건수를 647,443건에서 44만 6천여 건으로 축소
- 트위터 관련 범죄일람표 (6) 정치관여(비선거운동) 건수를 562,785건에서 33만 9천여 건으로 축소
- 총 전체 계정 2,600여개 121만여건에서 계정 1,100여개 78만여건으로 정리

■ **공소장변경 허가**

- 재판부 2014. 6. 16. 제3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 허가결정
- 3차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큰 다툼이 있지 않음

3. 주요 쟁점

■ 실체적 쟁점

-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 검찰에 의하여 지목된 트위터 계정들이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이 맞는지
- 국정원의 합법적인 직무범위를 일탈한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 절차적, 증거법적 쟁점

- 공소사실로 적시된 수많은 트위터 계정 등 구체적 범행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 증거로 제시된 트위터 계정들에 대한 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4. 향후 전망

가. 총론

-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공판절차에서 일부는 증거능력을 부인하였으나 일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음
- 실체적 판단이 쟁점을 될 것으로 보임

나. 증거능력 관련 쟁점

1) 재판부의 판단

- 2014. 5. 19. 판단 (제31회 공판기일)
-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수집한 트위터 관련 정보 (일부 증거능력 부인)
 -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트윗 관련정보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증거로 신청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임

- 다음소프트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다음 아고라 글에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으로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트위터 자료를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것은 적법함
 - 변호인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라도 검찰이 증거로 신청할 수 있음
-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빅데이터 업체로부터의 압수정보 (일부 증거능력 부인)**
 -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463개 계정 명의로 작성된 트윗글, 리트윗 등만 증거능력 인정
 - 검찰은 463개를 초과한 599개 계정을 기초로 2270개 계정의 트윗글 전부를 임의 제출받았음
-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받은 트윗 관련증거는 트위터 본사의 정보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 : 받아들이지 않음**
- **2014. 6. 30. 판단 (제36회 공판기일)**
- **트위터팀 직원 김○○의 이메일에 첨부된 '시큐리티' 문서의 증거능력 부인**
 - 원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
 - 문서에는 이 팀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직원 이름 및 김○○이 언제 어디서 트위터 활동을 했는지 등이 기록되어 있음
 - 진술증거라는 이유로 전문법칙 적용함 (야당과 검찰 측의 비판 : 트위터 계정 명칭 등이 단순히 적혀있는 일종의 장부 같은 비진술증거임, 전문법칙 적용되지 않음)

2) 재판부 판단의 의미 (재판에의 영향)

-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받은 트윗 관련 증거 자체는 인정**
 - 트위터 본사에 대한 국제사법공조 불발에 따라 본사로부터 압수수색은 되지 않았음 (계정의 동일성과 완전무결한 증거)
 - 다만, 국내의 빅데이터 업체에 등재되었던 간접적인 증거가 증거가 될 수 있

는지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

- 다만, 위 증거에 의하면 해당 계정에서의 트윗글의 내용은 나타나지만, ID 소유주 등 계정정보를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확보한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

- 질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양적인 문제임
- 증거수집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은 증거 및 영장을 초과하여 압수한 증거의 증거능력 부인
- 그러나 사실조회를 통한 증거 및 영장기재 압수증거 등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 인정받음

■ 김○○ 작성 이메일의 첨부문서 증거능력 부정

- 해당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
 - 팀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직원 이름 및 김○○이 언제 어디서 트위터 활동을 했는지 등
-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한 내용의 직접증거가 날아간 셈임
 - 트위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마당에 해당 트위터 계정이 국정원이 관리하던 계정인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짐
 - 위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려던 트위터 계정이 전체 계정 중 약 70%에 달한다고 함

다. 실체적 쟁점

■ 검찰이 주장하는 트위터 계정들 자체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인지 여부

- 트위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되었고, 해당 트위터 계정들이 국정원이 관리하던 계정임을 입증하기 위한 이메일 첨부문서가 증거능력 부정
- 현재 공소장 기재 계정 (약 1,100여개) 전부가 국정원 관리 계정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최종적인 제3차 공소장변경은 검찰이 2014. 2. 신청하여 2014. 6. 허가된 것임
- 검찰의 최종 공소장변경신청 이후인 2014. 5. 19. 및 2014. 6. 30. 상당수의 증거가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음

■ **기재된 내용이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판례(2013도4146 등)는 선거운동을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고 하여 규범적 개념으로 보고 있음
- 한편, 김용판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 2014노530)에서도 위와 같은 규범적 의미를 해석하면서, 공소사실 자체로 김용판의 수사방해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이 사건의 경우 김용판 사건과는 내용이 다르지만, 인터넷 게재 내용이 전부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을지 여부는 행위태양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되어야 할 것임

■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행하여진 행위인지 여부**

- 공직선거법상 구성요건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상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 대목임
- 앞서 본 국정원이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트위터 계정의 숫자, 사용횟수 등 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것임

■ **국정원장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일탈한 행위인지 여부**

- 국정원법위반(정치관여)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인정되는지 여부 와도 전반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재판부 관련 참고사항

- 해당 재판부 (서울중앙 형사21부)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 담당 재판부였음
- 김용판 사건에서 권○○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여 무죄선고한 바 있음

서울고법 원세훈 사건 보고(7. 18. 재판)

1. 개요

- 2016. 7. 18.(월) 10:00 ~ 12:00, 14:00 ~ 16:00 서관 404호 법정
- 재판부: 김○○ 부장판사(19기), 구○○(26기), 최○○(30기) 고법판사
- 검사: 김○○ 부장검사(○○지검 ○○지청, 30기), 이○○(○○지검, 32기), 단○○(○○지검, 32기)
- 법정 참관 국회의원: 박주민, 표창원, 진선미, 박범계, 이재정
 - 박범계 의원만 법사위임
 - 더불어 민주당 당내 설치된 기구인 『민주주의회복 TF』 구성원임
 - 팀장: 박범계, 위원: 표창원, 금태섭, 김병기, 박주민, 백혜련, 이재정, 진선미
 - 밑줄 의원은 법사위 의원임
- 기자: 뉴시스 강○○, 연합뉴스 황○○, KBS 홍○○, 동아일보 권○○, 뉴스1 안○○ 등
- 기타 다수의 국회의원 보좌관 등 참관

2. 오전 재판: 10:00 ~ 12:00

- 재판 시작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법정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음
- 재판 시작 후 법정 참관 국회의원들은 법정 방청석 맨 앞에 앉아서 법정을 방청함
 - 박범계 의원이 제일 마지막에 도착함
- ① 검사(김○○ ⇨ 이○○ 순)가 재판장 석명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

한 다음 그 주요 내용을 PT를 이용하여 설명(약 11시 30분까지)

- 주로 국정원 트위터 계정 관리에 대하여 제3자 등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형태, 국정원 업무 형태, 피고인 원세훈 등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제 국정원에서 사용하였고, 단순히 제3자와 공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범죄 공모 범위에 들어간다는 취지임
 - 국회의원이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단순히 석명사항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피고인 원세훈의 발언(중복좌파가 다시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등 다수의 관련자 진술 중 일부를 거시하면서 자세히 이야기하였음
 - 국회의원 보좌관,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음
 -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진선미, 박범계 의원은 퇴장
- ▣ ② 약 11시 30분 무렵, 검사의 PT 설명을 중단시키고, 재판장이 해당 석명에 대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의 석명(안보5팀이 신설되기 전인 2011년 이전부터 트위터 계정이 존재하였는데, 그 경우 국정원 직원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함
- 이에 대하여 검사는 지금까지 이런 절차 운영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검사와 재판장 간의 설전이 벌어짐
 - 김○○ 부장검사보다는 이○○, 단○○ 검사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함
 - 검사 측은 공판준비기일도 아니고, 석명을 요구하여 석명을 하면 이를 중단시키고 다른 사항에 대하여 석명을 요구하는 등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유감 표명
 - 다른 내용의 석명에 대하여도 기회를 주면 다시 설명하겠지만, 차라리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서 쟁점을 정리한 다음 진행하자는 이야기도 함
 - 나아가 지금 진행하는 해당 사항에 대한 석명에 대하여는 재판부도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질의까지 하여,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재판장은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함

- ③ 이 과정에서 남아 있던 의원들이 재판을 관심있게 지켜보기 시작하였고, 그 중 이재정 의원은 일어난 다음 법정 뒤에서 서 있는 등의 행동을 하였음
- ④ 다시 재판장이 추가 석명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록 제시(실물화상기를 통하여)하면서 설명하면서 오전 재판을 마무리함
 - 재판장과 검사 간의 설전 과정에서 피고인 원세훈, 이○○, 민○○ 및 그 변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한 채 그냥 앉아 있었음

3. 오후 재판: 14:00 ~ 16:00

- 오후 재판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채, 뉴스 강○○ 기자 등 일부 기자만 법정에 있었음
- ① 약 14:40까지, 검찰에서 오전 재판에서 진행 중 중단되었던 PT 설명을 계속 진행함
- ② 약 16:00까지, 피고인 민○○의 변호인(법무법인 태평양)이 검찰의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이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 피고인 원세훈의 변호인은 그 전 기일에 공소사실 전반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변론을 하였다고 함
 - 피고인 민○○의 변호인은 검찰의 당해 기일 PT 설명에 국한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이야기하였음
- 오후 재판에서는 재판장과 검사 간의 특별한 설전은 없었다고 함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7) 공판진행상황

1. 사건진행현황

가. 일반현황

▣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7 공직선거법위반 등

- 형사 21부 : 재판장 이○○, 이○○(주심), 오○○

▣ 피고인 원세훈

▣ 진행상황

- 6. 14. 접수 (불구속 구공판)
- 공판기일
 - 8. 26.(1차) 9. 2.(2차) 9. 9.(3차) 9. 16.(4차) 9. 23.(5차) 9. 30.(6차) 10. 7.(7차) 10. 14.(8차) 10. 21.(9차) 10.30.(10차), 11. 4.(11차), 11. 6.(12차), 11. 11.(13차), 11. 22.(14차), 11.28.(15차), 12.2.(16차), 12.5.(17차), 12.9.(18차), 12. 16.(19차), 12. 23.(20차), 1. 6.(21차) 실시
 - 1. 13. 공판준비기일 실시
 - 1. 27. 공판준비기일 예정

나. 별건 진행현황

▣ 알선수재 사건

-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형사 21부 : 재판장 이○○, 이○○(주심), 오○○
- 7. 25. 접수 (구속기소)

- 황보건설 역대 뇌물 혐의 (건설업자 황모씨로부터 1억원대 현금 등을 받고, 황보건설이 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
- 7. 5. 영장청구, 7. 10. 영장발부
- 구속만료 : 1. 24.

■ 2014. 1. 22. 판결선고

- 징역 2년, 추징 162,752,000원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는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판결선고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선고함이 일반적이지만, 공직선거법에서 병합 진행되어도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 선고 가능

2. 공소장 변경의 과정

가. 당초 공소장

■ 이 사건 공소장은 다음과 같이 7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제1항 :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 제2항 : 국정원의 직무범위
- 제3항 : 피고인의 국정원 운영 방침
- 제4항 : 사이버 국정홍보의 강화와 심리전단의 확충
- 제5항 :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지시
- 제6항 : 심리전단 직원들의 구체적인 범행 내역
 -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여명의 직원이
 -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와 같이 총 5,694회에 걸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함

-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계 범죄행위를 실행함과 아울러
-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 범죄행위를 실행함

● 제7항 : 결어

- 피고인, 3차장, 심리전단장, 사이버팀 팀장 및 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
-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계 행위를 함과 아울러
-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함

●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는 공직선거법위반(255조 3항 2호), 국정원법 위반(18조 1항), 공동정범(형법 30조), 상상적경합(형법 40조)임

- 범죄일람표 기재 약 3년간의 5,694회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봄

나. 제1차 공소장변경

■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의하여 추가된 범죄사실은 위 '제6항의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트위터를 이용한 범죄사실'**

- 사이버팀 직원 김○○이 2012. 9. 1. 트위터 계정에 '민주, 안철수, 보 조금 152억 받으려 눈속임 정당 만드나...' 라는 글을 게시함을 비롯하여, 2012. 9. 1.부터 2012. 12. 18.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트위터에서 5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 **공소장 변경 허가**

- 2013. 10. 30. 공소장변경 허가결정
-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인정” ⇨ **공소사실 자체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지, 유무죄 또는 범죄성립 가부 판단을 한**

것 아님

다. 제2차 공소장변경

▣ 공소사실 제6항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활동에 의한 범죄 실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철회·변경 및 추가함

- 범죄일람표(1), (2), (3), (4)를 일부 축소 및 대체
- 트위터 관련 범죄일람표(5)의 55,689건을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해당 범죄일람표 (5) 647,443건과 정치관여(비선거운동) 범죄일람표 (6) 562,785건으로 교체 및 추가
- 트위터 관련 선거운동 건수를 55,689건에서 647,443건으로 변경함

▣ 공소장 변경 허가

- 재판부 2013. 11. 28. 제2차 공소장 변경 허가결정
-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인정”
- 변호인 측의 공소사실 자체의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는 “최종 판단에서 고려할 것”

3. 주요 쟁점 및 특이사항

가. 주요 쟁점

▣ 실체적 쟁점

-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 국정원의 합법적인 직무범위를 일탈한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 절차적, 증거법적 쟁점

- 공소사실로 적시된 수많은 트위터 계정 등 구체적 범행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 미국의 트위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국제공조) 등 증거로 제시된 계정들에 대한 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나. 공판진행 관련 특이사항

■ 1차공판 요지 (8. 26.)

- 원세훈 국정원장 재직 시 발언
 - “정부·여당을 비방하는 개인이나 세력이 있다면 이는 우리 국민이라도 북한과 별반 다르지 않다”
 - “국정 성과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북좌파에 이기는 길이며 야당 등의 무분별한 폄훼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 “그땐 판사도 아마 적이 돼서 사법처리가 안될 거야. 다 똑같은 놈들일 텐데”
-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검찰 주장)
 - 심리전단 직원 1명당 하루에 3-4건씩 매일 정부·여당에 대한 찬성글, 야당·시민단체에 대한 반대글을 작성토록 한 뒤 게시글 목록을 제출받음
 - 심리전단 1개팀(20명)이 하루 60~80건, 매일 1200~1600건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됨
 - 심리전단은 4개팀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3개팀이 ‘댓글달기’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임

■ 2차공판 요지 (9. 2.)

- 민○○ 전 심리전단 단장 증인신문
 -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 지시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며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하여 부인
 -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활동은 ‘개인 차원의 일’로 돌리고, 여직원(김○○)이 오피스텔에서 머무는 동안 노트북에 담겨 있던 파일 187개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선거 관여활동을 해서 지운 것은 아닐 것”이라며 “(삭제작업은) 국정원 업무수칙상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하는 대처방식의 연장선이라는 취지로 답변
 - 국정원 직원이 지난해 11월23일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연평도 포격, 그날 잊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특정 야당후보를 거론하며 비방글을 게시한 사실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고, 개인적으로 한 일일 가능성이 있어 살펴봐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검찰이 “이런 글이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은 인정하느냐”고 되묻자 “특정후보를 거명했다는 점에서는…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 ‘중복’의 기준에 대한 재판장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 못함
 - 피고인측의 비공개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 가림막 설치한 채 진행
- 민○○ 전 단장이 여직원(김○○)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 “선거도 끝나고 이제는 흔적만 남았네요. 김○○씨 덕분에 선거 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툭툭 털고 일어서기 쉽지 않겠지만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3차공판 요지 (9. 9.)

- 국정원, 경찰, 정치권 관계자 통화기록 제출
 - 2012년 12월 11~16일 원세훈 전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 경찰 관계자, 정치권 관계자 등 총 10명의 상호 통화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 이○○ 전 국정원 3차장 증인신문
 - “북한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야당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가이드라인) 전혀 없다. 오히려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활동이 그런 것을 (정치인이나 정당 비판 등을) 특정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고 답변
 - “군으로 치면 군에서 적을 제압하라고 하면서 민간인을 사살하지 말라고 해도 군인이 현장에 가보면 적군과 민간인 구분이 곤란한 상황이 있고, 적군과 민간인을 구분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민간인 피해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개별적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넓은 의미에서 중복좌파 척결에 대한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면 된다“

■ 4차공판 요지 (9. 16.)

- 이○○ 전 심리전단 기획관 증인신문
 - 개그맨(정○○)의 발언까지 북한 관련 발언으로 생각했느냐?” 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
- 최○○ 전 심리전단 안보3팀장
 - “외부조력자를 고용한게 누구냐” 는 검사의 질문에 “팀장인 저다. 매달 300만원씩 주고 고용했다 “고 답변
- 최○○ 전 팀장이 여직원(김○○)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 “고생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추억으로 남을 것이고, 위기에 잘 대처했다는 영광도 남을 거예요”

■ 5차공판 요지 (9. 23.)

- 여직원(김○○) 증인신문
 - 경찰조사 시 외부조력자 관련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검찰조사 시 반복한 사실 인정 : 경찰조사 시에는 “민간인 조력자 이○○을 지인의 소개로 2012년 여름 두어 차례 만났고 인적사항도 직접 건네받았으며 오늘의 유머 아이디도 만들어 주었다” 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조사 시 “이○○은 파트장인 이○○이 섭외한 것이고, 자신은 2013. 1.경 이○○을 처음 만났다” 고 진술을 반복함

■ 6차공판 요지 (9. 30.)

- 이○○ 전 심리전담 3팀 5파트장 증인신문
 - 2012년 8월28일 대통령 비판에 대한 반박글 게시 차원에서 해당 영상을 올리라는 지시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고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을 패러디해 이명박 대통령의 성과 및 인성을 찬양하는 내용인 “ ‘오빠 엠비스타일’ 장안의 화제” 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올림
- 민간인 외부조력자 이○○ 증인신문
 - 2011년 연말부터 월평균 300만원을 받고 사이버 활동을 한 사실을 시인

- 오늘의 유머 등에 박지원·이정희·나꼼수 등을 비판하는 글을 쓴 데 대해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서, 쓰다 보면 순간 감정이 격해져서 꼭 북한 관련이 아니더라도 올린 것 같다” 고 답변

■ 7차공판 요지 (10. 7.)

-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윤○○ 증인신문
 - “모든 사이버 활동은 상부로부터 지휘체계를 통해 내려온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행해졌다. 이슈 및 논지의 선정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주요 내용은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됐던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과 흡사했다” 고 답변

■ 9차 공판 (10. 21.)

- 제1차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범죄의 기본적 사실 동일성에 관한 공방

■ 10차 공판 (10. 30.)

- 재판부, 제1차 공소장변경 허가
 -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 “증거조사 과정에서 증거능력 등으로 변호인측에서 탄핵할 기회 주어질 것임”

■ 12차 공판 (11. 11.)

- 피고인측, “검찰이 특정 키워드를 요청해 빅데이터 업체에서 트위터 글 2800만건을 받았다. 빅데이터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준수했는지 의심된다” 고 주장

■ 14차 공판 (11. 22.)

- 제2차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공방
- 트위터 글의 개수와 실질적 개수 등에 관하여 공방

■ 15차 공판 (11. 28.)

- 재판부, 제2차 공소장변경 허가
 -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공소권 남용과 공소사실 불특정의 사유는 공소장 변경의 전제는 아니고, 최종 판결할 때 변호인들의 주장 인정되면 공소기각을 할 것임”

■ 16차 공판 (12. 2.)

- 피고인측, 검찰이 빅데이터업체들로부터 받은 자료들은 개인정보로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

■ 17차 공판 (12. 5.)

- 검찰,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특정한 과정 설명

■ 20차 공판 (12. 23.)

- 피고인측, 트위터 계정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리 진행에 반대
- 검찰, 트위터 글의 실제 텍스트를 4가지 종류로 분류해 제시

■ 21차 공판 (1. 6.)

- 재판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
 - “같은 시간에 트윗 계정 3개 이상이 2회 이상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검찰의 논리는 변호인의 지적으로 상당부분 허물어져”
 - “변호인의 합리적인 의문 제기가 없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 공판준비기일로 다시 회부

■ 공판준비기일 (1. 13.)

- 검찰, “3주의 시간을 주면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도록 최종 의견을 제시하겠다. 변호인이 문제삼을 일이 없도록 깨끗이 입증하겠다”
- 피고인측, 트위터 계정의 정확성에 대하여 계속 문제점 지적하며, 핵심

쟁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 정리를 요청

- 1. 27. 추가 공판준비기일에서 빅데이터 수집업체의 자료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심리하기로 함

다. 현재 상황 및 향후 일정

- 검찰의 2차에 걸친 공소장변경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특정 과정이 정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부각된 상태임
- 검찰이 공소사실을 정리할 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분간(약 1월 말까지) 심리가 중단된 상태임
- 구속사건인 별건(알선수재 사건)은 별도로 선고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구속기간의 제한은 없게 됨
- 법관 정기이동시기인 2월 하순 전에 판결 선고 가능할지 여부 불투명함

[원세훈 재판 현장 스케치]

1. 오전재판

- 10:00~11:30 ⇨ 검찰이 지난 기일 재판부 석명사항에 대해 PPT를 하면서 설명
- 11:30~12:00 ⇨ 재판장이 관련 쟁점에 대해 다시 석명을 하자 검찰에서 '또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니 유감이다. 왜 재판부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계속 옮겨가며 재판을 지연시키는가'라는 식으로 반발함. 재판장은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련성을 설명하면서 석명을 구함에 따라 검찰과 공방이 진행됨
- 12시 오전재판 종료 및 오후 2시 속개

2. 오전 법정 분위기

- 검찰에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언급했고, 다소 감정적 설전이 오가긴 했으나, 크게 문제될 만한 격론이나 고성이나 오간 바는 없음
- 검찰은 야당 국회의원들의 법정방청정보를 사전에 알고 PPT준비를 하고 재판 도중에 유감표명도 수차례 한 것으로 보임
- 재판부도 11:30까지는 검찰의 설명을 참고 경청하였으나, 그 이후 설전이 오갔음
- 의원들이 방청하는 상황 하에 검사와 변호인 사이의 공방이 아니라, 재판부와 검사가 상호 공방을 하는 모습은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님
 - ☞ 원세훈 변호인 이○○ 변호사는 재판부와 검사 사이의 공방을 가만히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다만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실체에 관한 심증이 표출되거나 법정 분위기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운 것은 아님 ⇨ 법사위에서 재판진행에 대한 공격성 질의가 나올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함(이○○ 서울고등 공보관의 자체 판단)

3. 홍보심의관이 방청을 한 연합뉴스 황○○ 기자에게 傳聞한 사항

- 검찰이 재판 도중에 수차례 재판장의 절차진행이 유감스럽다는 언급을 하였음
- 의원들은 재판진행상 문제가 많다는 소문 때문에 재판방청을 온 것이라고 말함
- 다만 재판은 신성한 것이므로 판결 선고 후에 내부 논의를 거쳐 재판진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함(표창원 의원)
- 기자들의 전반적 반응 ⇨ 대법원 파기환송 후 14회 공판기일인데 증인 한명을 신문하지 않고 처음 재판을 하는 것처럼 진행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의견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판결 관련

■ '항소심에 책임을 전가한 이례적 판결' 지적에 관한 반론

◎ 법률심과 사실심의 역할이 준별되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 지적임

- 제1심과 항소심은 사실심이고, 상고심은 법률심임 ⇨ 사실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임
- 본 사건에서도,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적 판단은 법률심인 대법원의 소관이지만,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은 사실심인 파기환송심(항소심)의 소관임 ⇨ 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적 판단까지만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임
- 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사실상의 유·무죄 판단에 나섰다면 더욱 큰 문제·논란이 발생하였을 것임 ⇨ 상고심의 사실심 관여로 인한 여러 폐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음

◎ 증거능력에 관하여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항상 이러한 방식을 취해왔고 결코 이례적인 판결이 아님

-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에서 대법원은 항상 '법리만을 선언'하였고, 당해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사실 인정은, 선언된 법리에 따라 항상 파기환송심(항소심)에서 이루어지게 됨 ⇨ 위에서 본 "법률심과 사실심의 역할 준별"에 따라 당연한 것임
-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그리고 피고인 인권 보호에 관하여 중요한 발전·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받는 과거 대법원 판결들이 모두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음 ⇨ "위법수집 압수물 증거능력 배제" 판결(2007도3061 판결,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요건" 판결(2002도537 판결) 등
- 위 사건들 모두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판결 주문을 선고하고, 그 이유를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판결문에 밝히고 있음 ⇨ 본 사건과 동일한 형식·구조임
- 이른바 "유죄 취지 파기", "무죄 취지 파기" 등은 모두 사건 관련자들에 의한 추측에 불과할 뿐, 대법원 판결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함 ⇨ 원심 법원이 환송 후에 새로운 증거를 종합하여 환송 전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83도2613 판결), 결국 사실 인정에 따른 유·무죄의 결론 도출은 사실심에 맡겨져 있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고, 본 사건도 예외가 아님

■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결' 지적에 관한 반론

◎ 증거재판주의, 적법절차원칙에 충실한 판결임

- "업무상 작성된 문서"라고 모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통상문서'에 해당하는 것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임 ⇨ 통상문서가 아니면 문서의 작성자 자신이 법정에서 자신이 만든 문서가 맞다고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이고, 대법원도 그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어쩔 수 없는 것임을 고려해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음

“1954. 9. 23. 제정되고 1961. 9. 1.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그에 걸맞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에 관하여는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의 유무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진정성을 탄핵할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 작성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상관없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바, 그 나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몰라도 해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실정법의 명문조항을 달리 확장 적용할 수는 없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의 작성이 보편화되고 있고, 중요한 증거 서류가 컴퓨터를 통해 생성된다는 점에서 그 진실성에 대한 음미 없이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법에서 기본권의 보장을 후퇴시키는 것임 ⇨ 본 사건은 이러한 측면을 특히 고려한 ‘지극히 법리적인’ 판결임

◎ 법원은 종래에도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형사소송법상 방어권 보장과 관련 있는 사안에서는 사건의 정치성·당파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엄격한 판단을 해왔음

-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도 종종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파일에 관하여 자신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변호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99도2317 판결(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2007도7257 판결(이른바 일심회 사건) 등] ⇨ 지금 대법원의 증거능력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여론은 그러한 사건에 관하여도 일관된 입장을 취할 수 있는지 의문임
- 위 사건들에서 문제가 된 문서는 모두 업무상 작성된 문서로, 만일 위 사건들에서 업무상 작성된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유죄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이렇게 업무 관련 문건을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것으로 보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임
- 또한 최근 이른바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기재된 증거들이 모두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4고합261 판결) ⇨ 당시에는 일부 언론에서 법원의 “좌편향성”을 지적·비판한 바 있음
- 형사소송법 중 특히 증거능력 분야는 매우 정치(精緻)한 법리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고, 어떤 한 사건에서의 판단이 향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선례가 되어 파장이 클 수 있으므로 무척 조심스럽게 다루어짐 ⇨ 어느 한 사건의 정치성·당파성을 고려한 판결을 절대로 내릴 수 없는 분야임
- 철저히 법리에 따라 내려진 판결의 내용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으로 공격한다면 오히려 정당한 법률 해석에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 ⇨ 특히 그 대상이 “최고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관한 법리적 판결”이라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임. 끝.

1. 425지는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내용

가. 425지는 파일의 내용

- 출력물은 A4용지 420여 장 분량으로 첫 장에는 '4. 25...'라는 기재가 나오고, '1205...'에 이르러 끝나는 형태임
 - ▶ 즉, 위 파일은 2012. 4. 25.부터 2012. 12. 5.까지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임
- 위 파일의 각 날짜 아래에는 [논지해설], [금일 이슈 및 논지설명] 등의 제목이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이슈와 논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김○○이 하달받은 이슈와 논지인지,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모아 놓은 신문기사 또는 트윗글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음
 - ▶ '커플 관계 회복 방법', '이직시 면접 요령', '현명한 월급통장 관리 원칙', '덕담', '격언', '맛집 정보', '음담패설' 등 개인 신변 잡기적인 내용이나, 정치 이슈와 관련 없는 잡다한 지식 관련 내용이 있음
 - '귀와 눈으로 감상하세요! 아이유 신곡 복숭아 MV'
 - '돈을 벌려면 소수 편에 서라는 것이 원칙이다'
 - '놀아본 사람이 늙어서도 잘 논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많이 놀자'
 - '잔피액 1벌 29,000원, 진회색 사이즈 100 1599-8171 입금계좌/농협 xxxx'
 - '광진구 구의동 일반원룸 3000/30 세경공인증계사 02-xxx'
 - 'GD-SUPPORTERS'
 - '서울, 화학적 거세만이 대안일까?'
 - '박OO 1국 장모상 연락처 017-XXXX'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나. 시큐리티 파일의 내용

- 출력물은 A4용지 27장 분량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문장 형

태가 아니며, 작성자의 별도 설명이 없으면 그 의미를 한눈에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 낱짜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전혀 아님
- 트위터 계정들은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고, 보수 우파 논객 트위터 계정, 언론사 RSS¹⁾ 주소가 나열되어 있음
- 문장 형태가 아니어서 어떤 의미로 이러한 정보를 기재한 것인지 이해하기 매우 어려움
-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음
 - ▶ 뜬금없이 중간에 '내가 극복해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나였던 것이다. 이런 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즐겁게 하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김연아, 7분 드라마 중'
 - ▶ 끝부분에도 위와 비슷한 격언과 함께 차량용 블랙박스 '아이나비'의 재원에 관한 홍보 기사를 복사하여 기재하여 놓음

2. 425지는 파일은 문제가 되는 트위터 계정의 인정 범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증거임

- 716개 계정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기초 계정 269개는 시큐리티 파일에 무질서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지, 425지는 파일에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425지는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든 트위터 계정과 관련 없는 것임

3. 일부 언론보도의 문제점

1) Rich Site Summary의 약자로, 언론사 등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 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쉽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임. 심리전단 직원들은 트위터피드를 이용하여 언론사 및 다른 트위터 계정을 자동으로 트윗하는 기능을 사용함

○ 2015. 7. 17.자 노컷뉴스 기사 중 일부

'일기에 낙서 있다고 증거 안되나'...전자문서 증거능력 좁게 해석 논란 예상

한 현직 부장판사는 "선장의 항해일지나 상인의 가게장부에도 개인적인 내용이나 조악한 낙서같은 내용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증거가 안된다는 것은 법 논리상 다소 이상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수도권 현직 판사는 "일기나 일지가 아무리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조악하게 쓰여도 비슷한 형식과 패턴을 반복한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업무상 쓰던 문서라도 본인만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너무 엄격하게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혐의 입증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트위터 계정을 담고 있는 시큐리티 파일은, 낙서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일기장이라고 볼 수 없는 형식임

- ▶ 일기장의 기본은 매일 매일 날짜별로 적어 내려가는 것인데, 시큐리티 파일은 기본적으로 날짜별로 적혀 있는 형식의 문서가 전혀 아님
- ▶ 내용을 보아도 그날 그날 일어난 일 또는 그날 그날 모은 정보를 순서대로 기재한 것도 아님

○ 일기장에 대하여 법원은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도 않음

- ▶ 일기장에 대하여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A라는 사람이 쓴 일기장이 확실하더라도 A를 법정으로 소환하여 본인이 쓴 일기장이 맞는지 진정성립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준 후 증거로 사용함이 원칙(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고, 이러한 절차 없이 일기장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은 없음
- 즉 일기장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낙서 여부를 떠나 증거로 쓰지 못한다는 의미는 더욱더 아님. 위와 같은 절차를 거

쳐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후에 증거로 쓸 수 있는 문서임

- ▶ 일기장은 형소소송법이 예시하고 있는 '항해일지'나 '상업장부'와 같은 종류의 문서가 아니므로 일기장을 예로 든 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님
 - 항해일지에 낙서가 있다고 해도 항해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대법원이 이를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 제목이나 인터뷰 내용은 판결의 내용을 오해한 것임
- ▶ 요컨대, '낙서 없는 깨끗한 일기장도 당연히 증거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요약될 수 있음

4. 업무로 작성한 문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 업무상 작성된 문서라고 모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통상'문서에 해당하는 것만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임
 - ▶ 임금이라고 다 '통상'임금이 아니라 그 중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이듯, 업무상 작성된 문서 중에서 계속적·규칙적·기계적으로 작성된 문서만이 통상문서로 인정되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것임
 - ▶ 통상문서가 아니면, 현행 형소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문서의 작성자 자신이 법정에서 자신이 만든 문서가 맞다고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는 것임
 - 심리전단 직원은 법정에서 시큐리티 파일을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진술이 믿을만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임
 - 대법원도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의 해석상 어쩔 수 없는 것임. 이를 고려해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 것임

1954. 9. 23. 제정되고 1961. 9. 1.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그에 걸맞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에 관하여는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의 유무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진정성을 탄핵할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 작성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상관없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바, 그 나뉠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몰라도 해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실정법의 명문조항을 달리 확장 적용할 수는 없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5. 업무로 작성된 문서임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판례

-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 종종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파일에 관하여 자신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였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지금 대법원의 증거능력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여론은 그러한 사건에 관하여도 일관된 입장을 취할 수 있는지 의문임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 ▶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적단체인 영남위원회에 가입하고, 그 중 피고인 A는 영남위원회 구성원과 서로 토론하는 등으로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였다는 것임 ㉡ 문제가 된 증거는 공소외 B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 압수한 B의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된 문서파일들임 ㉢ 원심은 압수절차가 적법하고, 위조·변조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을 긍정하였음
 - ▶ 컴퓨터 디스켓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 가치 ▶ 피고인과 공범이라고 주장된 B를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내사하던 수사기관이 B의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하면서 동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컴퓨터 디스켓 등 79종의 물품을 압수했음. 그 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인 이적단체 찬양, 고무, 동조의 점에 관한 사

실은 B로부터 압수된 디스켓에 담겨 있다는 '회사생활을 강화하자', '회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생각해 볼 과제', 'ㄷㄹ의 발전적 해산에 즈음하여', '대중적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자', '탄생 00주년 토론자료', '조직생활총화서'(8-35-1) 등 거의 B로부터 압수된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의 내용을 그 증거로 하는 것임. 위 문건은 일부 가명으로 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작성자 명의를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압수된 당사자인 B는 위 문서가 자신의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음

▶ **[대법원의 판단 = 증거능력 부정, 원심 파기환송]**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위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들(컴퓨터 디스켓에 대하여 실시한 검증 결과는 단지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의 내용이 출력물에 기재된 것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컴퓨터 디스켓에 보관된 문건의 내용이다)에 대하여는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쓴 것은 위법하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이른바 '일심회' 사건)**

- ▶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국가기밀(=민주노동당 내부 상황과 주요 인사들에 관한 사정 등)을 탐지·수집·전달하였다는 것임[국가보안법위반(간첩)], ㉡ 문제가 된 증거는 피고인들 등으로부터 압수된 USB 메모리스토릭에 저장된 문서파일들로서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원심은 작성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된 문서파일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법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증거능력을 부정함

- ▶ [검사의 주요 상고이유] ㉠ 디지털증거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작성자의 진술'이란 작성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이 아니라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행하는 모든 진술'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함. 특히 전자문서의 경우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 유무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진정성을 탄핵할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성립의 진정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함 ㉡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5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어야 함

▶ [대법원의 판단(상고기각)]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생략)... 원심은 나아가, 검사가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한 문건 중에서 판시 53개의 문건은 그 작성자가 제1심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문건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피고인들과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증거법칙 위배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경우 논지와 같은 정황자료만으로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5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에서 본 법리에 배치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5조의 요건을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이러한 판시는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뿐만이 아니라 선거관련 사건에서도 이루어졌음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 [사건의 개요] 제19대 총선 광명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피고인들(국회의원 이연주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임)이 선거운동기간 중 선관위에 유급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등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문제가 된 증거는 USB 문건 등으로 작성자로 추정되는 자가 법정에서 진정성립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였음
- USB 문건은 핵심적인 입증 서류이며 그 내용은, 피고인이 선거캠프의 조직국장으로서 선거사무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작성한 문건으로 그 주된 내용이 선거사무원의 인적사항, 추천자, 역할분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일자,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일한 일자, 신고된 일자에 해당하는 일당,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일한 일자에 해당하는 일당 등을 기재한 서류였음
- [검사의 상고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할 핵심증거로 제출한 디지털 저장매체의 출력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앞서 본 일심회 사건 검사의 논지와 동일함

▶ [대법원의 판단(상고기각)]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원심은, ...위 각 문서들은 작성자인 피고인 1 또는 피고인 2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고, 법문상으로 볼 때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원심은, ‘공소외 1 USB 문건’과 ‘공소외 2 제출 서류’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문서들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공소외 1 USB 문건’ 중 선거운동원들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표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공소외 2 제출 서류’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위 사건들에서 문제가 된 문서는 모두 업무상 작성된 문서로, 만일 위 사건들에서 업무상 작성된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유죄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이렇게 업무 관련 문건을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것으로 보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임
 - ▶ 예를 들어, B의 일기장에 ‘A가 살인하는 것을 목격했다’, 또는 B의 회사 업무 컴퓨터 업무 관련 문서 파일에 ‘A에게 뇌물을 주었다’ 라는 기재가 있을 경우, 이러한 문서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일기장이나 업무 관련 문서의 작성자인 B를 법정에 부르지 않고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임
 - ▶ 그러나 B가 A를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을 기재해 놓았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해 B가 기재한 것의 진실성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피고인 A의 방어권을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 이로 인해 무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임

- ▶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의 작성이 보편화되고 있고, 중요한 증거 서류가 컴퓨터를 통해 생성된다는 점에서 그 진실성에 대한 음미 없이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법에서 기본권의 보장을 후퇴시키는 것임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2018. 6. 5.

기억조평실

I. 정치권

1. 청와대

■ [대외적] 입장 표명 자제

☑ “여야, 판결 존중하지만...온도차, 청, 말 아껴”(뉴데일리 보도 내용)

▶ “...한편 이번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던 청와대는 이날 특별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동향을 파악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 [대내적]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준 것으로 평가

- ① 민정 라인을 통하여 판결의 취지가 잘 보고·전달되었음
- ②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봄
- ③ 판결 선고 결과에서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하여 준 것으로 받아들임

2. 여야 각 당

가. 개요

■ 원칙적으로 ‘판결 존중’ 입장 최우선 표명

■ 각론에 있어서 ‘온도차’

- 새누리당은 환영, 민주당은 다소 우려



나. 새누리당

▣ 대변인실 공식 논평

- ① 판결 존중
- ② 노사 현장에서 판결의 취지를 잘 반영해 통상임금 범위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노사 분쟁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
- ③ 통상임금의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 상태를 고려한 탄력적인 해석을 제시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평가

▣ 소속 의원 반응

☑ 김성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 ▶ 근로자 임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판결
- ▶ 재계 부담 가중 우려

☑ 이종훈 의원

- ▶ 이번 판결은 노사 자율 영역을 상당부분 인정했지만 한편으론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을 남겼다.
- ▶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

☑ 이완영 의원

- ▶ 대법원이 매우 충실하게 검토했다. 입법 개정이 필요없다.
- ▶ 소급해서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산업 현장의 노사분규를 크게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논평

다. 민주당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논평

- ① 판결 존중
- ②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당연한 결과
- ③ 다만,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추가 임금 청구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
- ④ 혼란과 분쟁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

▣ 소속 의원 반응

☑ 홍영표 의원

- ▶ 대법원 판결은 논란 소지 있다.



-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수당, 격려금, 인센티브, 복리후생비 일부(비고정) 등에 대해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하겠다.
- ▶ 판결에 모든 복리후생이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 ▶ 입법 논의과정에서 각 사안별로 다양한 사례를 종합할 계획

3. 기타

▣ 정의당

-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 기업에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크게 아쉬움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 노사 간 의견을 균형 있게 조율하고, 기업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노사가 현명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II. 재계

1. 개요

▣ 아래와 같은 **대외적·공식적 반응**을 내놓으면서 **각자의 셈법에 몰두**

- ① 임금 추가 부담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표현
- ② 다만, 신의칙에 의한 소급 청구가 제한되는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해 다행스러움을 표시하기도 함

2. 경제인단체별 입장

▣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 25년간 행정해석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판결이기 때문에 **우려**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그 게 깨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

▣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 노동비용이 급증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우려

-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 중소기업중앙회

- 정부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

■ 기타

- 한국중전기업연합회: 인건비 부담 증가가 유동성 악화로 이어져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지는 중전기업이 속출할 것
- 한국경제연구원: 투자가 위축될 것에 관한 우려를 표명

3. 개별 기업별 입장

■ 대기업

- 상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
 - 이미 상당수 기업은 연봉제로 전환
 -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상여금 많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은 큰 영향 예상
- 연봉제로 전환한 삼성 그룹 계열사들은 작은 영향 예상

■ 중소기업

- 대기업보다 당혹해하는 분위기
 - 인력을 뽑기가 쉽지 않아 야근과 잔업이 많을 수밖에 없어 인건비 부담이 더 큼
 - 대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시킬 것 걱정

■ 자동차업계

- 잔업이나 휴일 근로가 많아 인건비 상승에 부담



- 현대자동차: 인건비 증가 폭이 1조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
- 한국GM: 본사의 향후 행보가 문제이고 한국 철수설이 불거질까 우려

■ 제조업계

- 인건비 부담이 많은 제조업계가 가장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

■ 기타

- 증권업계: 국내 증시에 부담 커질 것
- 식품업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평가함

III. 노동계

1. 개요

- ①정기상여금이 포함되었다는 원칙을 상당히 중시하며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
- ②과거 부분 청구를 배제할 여지를 둔 것에 대하여는 우려

2. 한국노총

- ①대체로 환영
- ②복리후생비 부분이 제외된 것은 유감이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의구심을 제기
 - 과거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임금 이분설로 되돌아 간 것

3. 민주노총

- ①대체로 환영
 - 당연한 판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
 -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



을 즉각 폐기해야 하고, 포괄역산제·변칙적 연봉제 등 또 다른 왜곡된 임금 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함

▣ 2신의칙 적용 여지를 둔 것은 불만

-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 입법취지에 반하는 매우 부당한 판결

IV. 언론계

1. 개요

- ▣ 각 언론사들은 대체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은 포함”을 헤드라인으로 하고, 다소 중립적인 사실 보도가 주류임
 - 판결에 관한 “한 줄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 **판결 선고 직후에는 보수 성향 언론과 진보 성향 언론을 막론하고 대체로 노동계 손을 들어주었다라고 평가하는 언론사가 많았음**
- ▣ 시간이 지나면서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판결로 평가하는 언론사가 늘어남
 - “내 봉급은 얼마나 늘어나나?”라는 식의 다소 수월한 방식의 향후 전망성 보도가 많아짐

2. 보수 성향 언론

- ▣ **균형감 있는 판결 또는 노동계에 유리한 판결로 평가**
- ▣ **조선일보**
 - [사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반영해 임금 체계 개편 서두르라”
 -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재계와 노동계의 가장 큰 현안인 통상임금 문제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고 균형을 맞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동아일보**



- [사설] “통상임금 대법 판결, 후유증 줄일 법 정비 서둘러야”

- “...재계와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算入)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앞으로 기업 부담은 커지게 됐다...정부와 국회는 노사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 방안을 시급히 고민해야 한다...”

3. 진보 성향 언론

- ▣ 노동계에 유리한 판결로 보아 환영하는 경향이 강하면서도, 예외 인정에 대하여 우려

- ▣ 경향신문

- [사설] “통상임금 판결 노동정책 전환 계기 삼아야”

- “...통상임금에 대한 이번 판결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치를 사법부가 법적으로 판단한 것일 뿐이다...”

- ▣ 한겨레

- [사설] “통상임금 대법 판결, 장시간·저임 노동 해소 계기 되길”

-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앞으로 분쟁의 소지를 없앤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그를 근거로 추가임금은 사실상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지나치게 기업 쪽만 배려한 인상이 짙다...”

V. 기타

- ▣ 온라인 동향

- 판결 선고 직후에 “대법원 판결이 노동계 손을 들어주었다”라는 트윗들이 많이 유포되었고, 그것이 이후에도 온라인 여론을 지배하였음

한겨레/[속보] 대법원이 “통상임금서 상여금을 제외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twitter



- ☑ JTBC 뉴스/[속보] 대법 "1개월 넘어도 정기성 인정되면 통상임금" twitter 2시간전39
- ☑ 오마이뉴스/"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노동계 손 들어준 대법원 <http://t.co/Y7hdVSMYhY> twitter
- ☑ YTN/[속보] 대법원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판단 = 대법 "통상임금서 상여금 제외 노사 합의 무효"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 아니다" twitter

- 끝.



현안 관련 말씀 자료

2015. 7.

기획조정실

1. 과거 왜곡의 광정

▣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

● ①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

❖ 아래 ①과거사 정립, ②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 ②미래지향적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 **국가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왔음

❖ 아래 ③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4대 부문 개혁 중 ④노동, ⑤교육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 ①**과거사 정립**

● 과거 정권에서의 **이념·정파간 소모적 대립·논쟁**의 결과,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옴 ⇨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

●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 **보고서만 믿고 국가 배상을 결정해선 안 되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함**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 과거사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재차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음**

☑ **대법원 2015. 4. 17. 선고 2014다234155 판결**

▶ 과거사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 대통령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함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님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 ⇨ **혼돈·경시되어온 국가관의 바른 정립 노력**

● **이석기 전 의원 사건**

❖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폭동과 내란을 선동한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죄로 중형을 선고**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선동한 행위를 **내란선동죄로 인정함**

●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

❖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를 이끌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체제 도전 행위에 제동을 걸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 이 사건 빨치산 추모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



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이고, 피고인이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인솔하여 이 사건 전야제에 참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 등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③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 경제 관련 사건의 처리 ⇨ 단순한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면밀히 고려
- 한편, 참여한 갈등·대립의 존재로 말미암아 정당한 결론이라도 이를 도출하는 과정·절차가 소홀하면 또 다른 소모적인 논쟁을 초래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대법원은 공개변론 중계방송 등을 통하여 절차적으로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모색하였음
- 통상임금 사건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약 38조 원으로 추산됨)을 최대한 고려하여, 노사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제시함
 - 특히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을 통하여 그러한 결론이 최소한의 혼란 속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임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 통상임금도 정기상여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도,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시킴

● 키코 사건

- 금융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게 대립한 사건에서 역시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을 실시하는 등 절차적인 노력을 통하여 양측이 승복할 수 있는 결론 도출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

- ▶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사건

- ❖ 철도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라 추진된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하여 이를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등 분쟁·갈등 상황을 종식시킴

☑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여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철도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함

■ ④ 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관련

-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은 노동 부문 ⇨ 노동 부문의 선진화와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노력

● KTX 승무원 사건

- ❖ 공공 부문 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쟁점이 관계된 사안에서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함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 ▶ KTX 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고, 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음

● 정리해고 사건

-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 ▶ 악기 제조업체인 콜텍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봄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 ▶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

● 철도노조 파업 사건



- 노사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하여 파업의 법적 기준을 정립함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 철도공사는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아 사측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파업을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철도노조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

■ **⑤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관련**

- 교육 부문과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건이 다수 존재함 ⇨ 역시 **4대 부문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방향을 모색함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국가 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민주주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과, 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1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통보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함

☑ **대법원 2015. 6. 3.자 2014무548호 결정**

▶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놓음**

[끝]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

▣ **①과거사 정립**

●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 보고서만 믿고 국가 배상을 결정해선 안 되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함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 과거사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재차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음

☑ 대법원 2015. 4. 17. 선고 2014다234155 판결

▶ 과거사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음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1622, 2015. 1. 22. 선고 2012다304365 판결 (광주항쟁 손해배상청구 사건)

▶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위자료를 포함한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함

●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 대통령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함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님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

● 이석기 전 의원 사건

-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폭동과 내란을 선동한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죄로 중형을 선고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선동한 행위를 내란선동죄로 인정함

● 원세훈 사건

-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유죄 인정 부분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에서 공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 증거로 채택한 일부 디지털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위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함

●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

-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를 이끌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체제 도전 행위에 제동을 걸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이 사건 빨치산 추모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이고, 피고인이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인솔하여 이 사건 전야제에 참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 등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밀양 송전탑 사건

- 고압송전선 및 송전탑 위치 문제를 두고 밀양 주민과 한국전력 사이의 대립과 농성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던 상황 ⇨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용결정,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기각결

정으로 갈등의 확산 방지와 분쟁 종식에 기여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 10. 9.자 결정문** 이유 中

▶ “송전선로 공사는 **공익사업으로서, 국가 전체 전력 수급계획에** 근거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것이고,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할 경우 변전소의 과부하와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한다**”

● **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건**

-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정부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선언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판결**

▶ 어느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중략)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중략)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전국가적 재난상황의 조기 극복 방안 제시**

- 미국 9·11 테러 관련 VCF(Victims Compensation Fund)에 의한 보상 제도 벤치마킹 ⇨ 법관 등이 참여하는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한 신속하고 **종국적인 배상 및 보상 방안** 국회에 제시
- 사법부 제시 법률안이 그대로 반영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㉓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 **통상임금 사건**

-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약 38조 원으로 추산됨)**을 최대한 고려하여, 노사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제시함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도 정기상여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도,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시킴

●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 사건**

- ▣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할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하급심 판결의 대체적인 입장임(대법원 계속 중인 2012다115991 사건의 원심 등 다수)

- 그럼에도, ①중복할증 시 기업의 막대한 추가 부담(약 8조원 + 향후 매년 약 2조원)을 고려하고, ②노사정의 자율적 타협을 존중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노동개혁 결과 도출시까지 대법원 판결 선고를 잠정 보류하고 있음

● 키코 사건

- 금융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게 대립한 사건에서 양측이 승복할 수 있는 결론 도출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

▶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사건

- 철도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라 추진된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하여 이를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등 분쟁·갈등 상황을 종식시킴

☑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여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철도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함

■ **④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관련**

● KTX 승무원 사건

- 공공 부문 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쟁점이 관계된 사안에서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함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 KTX 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고, 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음

● 정리해고 사건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이고 유연한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 악기 제조업체인 **콜텍**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봄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

● **철도노조 파업 사건**

- 노사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하여 파업의 법적 기준을 정립함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 **철도공사**는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아 사측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파업을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철도노조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사건 ⇨ 유효 여부에 따라 **향후 노동조합의 운영방식 전반에 큰 파급력** 예상(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지 여부, 사용자가 새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기존 노조 재산의 귀속 등)

☑ 대법원 2012다96120 사건

▶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금속노조의 산하조직)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피고)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자,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 임원 및 조합원으로서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조직형태 변경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 ⇨ **2015. 5. 28. 공개변론 실시, 추후 대법원 선고 예정임**

■ **⑤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관련**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민주주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과, 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1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통보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함

☑ **대법원 2015. 6. 3.자 2014무548호 결정**

- ▶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놓음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2015. 9. 22.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와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주심 권○○ 대법관)
 -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선언
- 위 판례는 그 후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15444 판결(주심 고○○ 대법관) 등에서도 거듭 확인됨 ⇨ 확고한 판례로 정립

▣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1심 판결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3가합544225 판결 외 1건¹⁾
 -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는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동일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

▣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등 진보 언론의 1심 판결에 대한 옹호

☑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는 위법행위...대법에 반기든 하급심(한겨레, 9. 17.)

▶ 대법원이 거듭 내놓은 판례를 하급심이 정면으로 치받으며 따르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판결은 결국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만큼 일선 판사들과 대법관들의 견해차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중략) “대법원 판결에 부응했던 하급심 재판부의 성찰과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 판사들 사이에서 논의의 Frame이 왜곡될 우려

-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판사” v. “문제의식 있는 소신 판사”

1) 같은 날 같은 재판부(재판장 김○○ 부장판사)가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0175 판결

- 현재의 상황을 방지할 경우, 사회적으로 의견 대립이 치열한 사안에서, ① 대법원 판례를 따르는 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판사이고, ② 김○○ 부장판사와 같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사는 문제의식 있는 소신 판사라는 **왜곡된 프레임(Frame)**이 판사들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 존재

■ **정책법원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成長痛** ⇨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법치주의 발전에 따라 정치적·사회적으로 의견 대립이 치열한 사안이 법원에 접수되어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거쳐 사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 ⇨ **“熟議的 民主主義(deliberative democracy)의 場으로서의 법원”**
- ‘정치적·사회적 갈등 요소’가 강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늘어남에 따라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하급심 판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종교·인권(양심적 병역거부), 과거사(유신헌법하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등 한정된 영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하급심의 대법원 판례 위반 사례가 향후 성소수자 문제(동성혼), 노동, 경제민주화, 복지, 이주노동자·난민,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차제에 “대법원 판례가 동종 사건에서 하급심 판결에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영미법의 “선례구속의 원칙”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변용할지 여부 검토

2. [이론적 검토] 대법원 판례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

가. 쟁점

- 대법원 판례가 당해 사건이 아닌 **동종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헌법

☑ 헌법 제103조 [법관의 독립]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법률

● 법원조직법

▶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민사소송법

▶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②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 소액사건심판법

▶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군사법원법

▶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할 때
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사법원이 종전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할 때

다. 국내의 논의

■ 윤○○ 前 대법관의 견해²⁾

● 대법원 판례의 직접적 구속력은 부정됨

-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상급법원의 판례가 하급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고 하기 때문에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밖에 없고,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되는 것이 보통임
-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8조는 심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하여 ‘해당 사건’에 한하여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고, 그 후의 동종의 사건에 대한 선례로서의 구속력에 관한 것은 아님

● 대법원 판례의 간접적 구속력은 인정됨

- 소액사건심판법 등의 규정(특히 소액사건심판법은 상고이유로서 제3조 2호에서 ‘대법원의 판단과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일종의 간접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음

● 대법원 판례의 법적 구속력의 근거

- ① 법적 안정, ② 평등의 요청, ③ 법관은 국가의 재판조직의 일원으로서

2) 윤○○, 판례의 기능, 민사판례연구 I, 박영사(1979), 357-369면

판례를 존중하며 사법전체와의 조화를 꾀할 책임이 있음

- 심급제도의 구조상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리더라도 당사자에게 시간과 비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 상급법원에 가서 결국 깨뜨려지고 말기 때문에 상급심의 선례는 하급심의 법관들에게 사실상 강한 구속력이 있음
-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해서 각기 아무런 관련 없이 직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통일적인 사법제도의 운영 중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법관은 사법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원활하게 기능하기 어려움 ⇨ 하급심법관으로서는 판례를 따르지 않을 이유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논증할 수 없는 이상 판례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법관의 직업윤리임에 그치지 않고 법적인 의무임

▣ 헌법재판소의 견해

-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선고 2002헌마18 결정에서 대법원 판례 위반을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로 삼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에 관한 견해를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위 견해는 윤○○ 前 대법관의 앞서 본 논문 내용을 별도의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함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2헌마18 결정

▶ 어떤 사건의 판례가 그 후 동종의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을 갖는가는 학문상 이른바 "선례의 구속력(拘束力)"이라든가 "판례의 법원성(法源性)"이라는 문제로서 논의되어 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례구속성의 원리(doctrine of stare decisis)가 지배하여 온 영미법계국가에서는 판례법이 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반면, 대륙법계국가에서는 상급법원의 판례가 하급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고 하기 때문에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밖에 없고 따라서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다른 대륙법계국가와 사정은 비슷하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심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하여 당해사건에 한하여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고 그 후의 동종의 사건에 대한 선례로서의 구속력에 관한 것은 아니다.
▶ 선례구속의 원칙을 일찍이 채택하고 있는 영미국가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일반적인 법원리라기보다 **사법정책의 문제**이고, 동 원칙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는 **법적 확실성(certainty), 안정성(stability), 그리고 예견가능성(predictability)**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심○○ ○○고법 부장판사의 견해³⁾

-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른 법관들의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일정한 준거로서 작용하는 힘, 즉 ‘준거력’을 갖는데, ‘사실상 구속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준거력은 그에서 벗어나려는 것 자체만으로는 위법성을 근거 지우지 못하므로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아님**
 - **준거력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임** ⇨ 모든 국민은 법 적용기관인 사법부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 **재판이라는 것은 국가작용의 하나이고, 국가의 의사표시로서, 법관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며, 재판을 받는 국민은 법관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재판은 본래 누가 담당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함** ⇨ 모든 법관은 자신만의 독단적인 관점이 아니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전체 사법부의 관점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근거] ①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전체’ 법원에 귀속시키고, 대법원에 최고법원성을 부여한 헌법 제101조, ②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후문(기본권보호의무를 이행할 때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③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 ④ 헌법 제103조의 양심은 법관의 지위에서 가지는 직업적·기능적 양심에 해당함

3) 심○○, 판례 변경의 의의, 민사판례연구XXXVI, 박영사(2014), 930-931면

라. 일본의 논의

▣ 최고법원의 판례에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 견해의 근거⁴⁾

- 법적 안정성 또는 소송경제의 요청
- 재판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의 의사표시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사후적 통제로서 행하여지는 최고법원의 판단을 미리 예측하여야 할 법관의 직무상 의무
 - 하급심의 법관으로서는 최고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같은 판단을 따를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 ⇨ 이러한 의무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구속력이라고 하여도 간접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있음
- 국가기관인 법원에 요구되는 평등의 요청⁵⁾
 - 법원에 의한 공평한 해결이 기대되어지는 경우에 법원은 동종의 사건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평등의 요청

▣ 구속력 있는 판례에 대한 하급심 법관의 대응⁶⁾

- 판례가 변경될 때까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견해(判例追隨說)
 - 대법원의 판례는 유일 최고의 법원이 한 판단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일하려는 움직임을 예정하고 있음.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문제에 대하여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하여도, 상급심에서는 판례에 따라 판단이 내려질 개연성이 높음. 대법원의 이러한 성질 및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고려한다면, 법관으로서는 판례에 따라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4) 中野〇〇, "判例の拘束力について一考察," 「判例タイムズ」 제150호, 222면 [이〇〇, 판례의 의미와 구속력에 관한 소고, 판례실무연구IV, 박영사(2003), 250-252면에서 재인용]

5) 田中〇〇, 判例タイムズ 臨時増刊 14卷 13號(150), 755-760면 [이〇〇, 판례의 의미와 구속력에 관한 소고, 판례실무연구IV, 박영사(2003), 250-252면에서 재인용]

6) 西野〇〇, "裁判の過程," 「判例タイムズ」(1995), 340-346면 [이〇〇, 판례의 의미와 구속력에 관한 소고, 판례실무연구IV, 박영사(2003), 253-254면에서 재인용]

하지 않을 수 없음. 판례에 따르지 않을 것이 허용되는 것은, 그 이유를 충분한 설득력으로 논증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

● 判例基礎重視說이라고 부를만한 견해

- 하급심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①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명백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경우, ② 그 판례가 입각해 있는 기초사정에 그 후 큰 변동이 생기거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판지(判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혹은 ③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판례상의 일반적인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견해

● 判例豫見說이라고 부를만한 견해

- 재판이라는 것은 국가의 작용이고, 국가의 의사표시이며, 법관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기관이라는 입장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은 본래 누가 담당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어야 함. 상소심에서 시정될 수 있다는 것은 차선의 방법이고, 본래 제1심 단계에서 모두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될 판단과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이 이상적임. 법관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 같은 판단에 구속되는 것이고, 판례는 그것을 예측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며, 판례가 직접 법관을 구속하는 것은 아님

마. 영국의 선례구속의 원칙(the doctrine of judicial precedent)⁷⁾⁸⁾

■ 내용

- 각급 법원은 서열상 상위 법원이 내린 이전의 판결에 구속되므로, 하위 법원은 동종의 사건에서 상위 법원이 내린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음

7) 또는 the principle of stare decisis

8) 제○○, 영국의 선례 변경, 민사판례연구XXXVI, 박영사(2014), 1179-1180면

- 항소법원의 어떤 부에서 내린 이전의 판결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을 다루는 항소법원의 법관을 구속함

▣ 선례의 구속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술

● ① 구분 (Distinguishing)

- 유사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선례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하는 것 ⇨ 결국, 선례의 적용범위는 동일·유사 사건을 다루는 그 후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체화되는 결과가 됨

● ② 선례 변경 (Overruling)

- 나중에 다른 사건을 다루는 상위 법원이 하위 법원에서 생성한 이전의 선례를 변경하는 것. 같은 급의 법원은 다른 부에서 내린 선례를 변경할 수 없음. 대법원은 자신이 내린 선례를 변경할 수 있음

● ③ 선례 이론의 예외

- 선례를 무시하는 것 ⇨ 항소법원과 상급법원이 동급의 다른 부에서 생성한 선례를 무시할 때 활용하는 기법으로 매우 예외적인 사안에만 허용됨

바. 김○○ 부장판사 사례에 대한 판단

▣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심에 대하여 '직접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 구속력' 또는 '준거력'만 갖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한○○, 헌법학(2015), 1339면**

- ▶ 하급심법원은 당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설사 **동일한 종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급법원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또한,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견해에 따라 판결해야 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급심법원에 의하여 파기환송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 정○○, 헌법학원론(2015), 1407면

- ▶ 하급법원의 판례가 상급법원의 판례에 **사실상 구속**되는 경우가 있으나, **하급법원이 반드시 상급법원의 판례에 합치하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을 두고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향후 상급심에서 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도 인정할 수 없음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이 경우에는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직무윤리’ 위반 가능성 존재

- [원칙] 하급심 판사의 대법원 판례를 따를 의무

- ①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 ② 법적 안정성의 요청, ③ 헌법 제103조의 양심은 법관 개인의 양심이 아닌 직업적 양심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급심 판사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전체 사법부의 관점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담함



- 소액사건심판법이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허용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할 때’를 상고이유로 삼는 것은 **하급심 법관에게 ‘대법원 판례를 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5267 판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定義的)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라고 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 [예외]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① **대법원 판례의 적용범위(射程距離)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해당 사건이 대법원 판례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거나(영미법상 선례의 구속성을 벗어나기 위한 기술 ⇨ 구분: Distinguishing), ② 대법원 판례가 입각해 있는 기반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거나, ③ 대법원 판례가 명백하게 불합리하다는 사정(단순한 의견 차이만으로는 부족)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여야 할 것임**

● [검토] 김○○ 부장판사 사례의 경우에 대한 판단

- 김○○ 부장판사는 ①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에 **명백하게 불합리한 부분(단순한 의견 차이만으로는 부족)이 존재하지 않고, ② 위 대법원 판례 선고 후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③ **해당 사건을 대법원 판례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할만한 특별한 사**



정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직무 윤리 위반의 가능성** 존재

3. 대응 방안

가. 직무감독권 발동 여부 ⇨ 소극

1) 일반론

▣ **법관의 재판 관련 행위도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무감독권 행사의 대상이 됨**

- [사례] 국선변호인선정 취소결정 소급작성[감봉 4월 징계(2014년)], 법정 구속 관련 고지절차 등 위반[구두경고(2007년)] 등 다수

▣ **독일, 일본, 미국의 경우도 법관의 재판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독일] 폐지된 법률을 적용한 경우, 법원조직법상 변호사에 대해 질서유지수단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음에도 소송지휘에 불응하는 변호사를 법정경위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끌어내도록 한 행위
- [일본] 집행유예 결정자이고 징역형에 처하여야 할 사건을 부주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과거 유사 유형의 실수가 2회 더 있어 계고처분을 받은 사례(1963년),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최고재판소 스스로 제정한 형사소송규칙시행규칙을 간과하여 오판을 하여 과료 처분을 받은 사례(1950년)⁹⁾
- [미국] 뉴저지주 판례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상 잘못은 원칙적으로 징계

9) 裁判所法逐條解説 中券(1969), 146쪽; 兼〇〇 외 1인 裁判法(제4판), 264쪽은 재판업무에 관한 재판관 징계원인으로 '법령 적용, 준수 상 명백하고 중대한 과오'를 들고 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것이 충분히 신중하고 능력 있는 법관을 기준으로 할 때 “명백한” 실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분명한 증거가 있으며, 아울러 법관의 잘못이 ‘터무니없는 것(무능)’이거나 ‘악의적’이거나 반복된 잘못이어서 그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를 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2) 검토 의견

▣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징계 ⇨ 소극

- [이론적]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심에 대하여 ‘직접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 구속력’ 또는 ‘준거력’만 갖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판사들의 인식] 많은 판사들이 ‘판례의 사실상 구속력’, 즉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전체 사법부의 관점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음 ⇨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선고한 판사에게 직무감독권이 행사될 경우 판사들의 심각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언론 환경] 직무감독권이 행사될 경우 한겨레, 경향 등 진보언론과 야당에서는 “법관의 독립 침해” 운운하며 법원을 공격할 것이 명백함 ⇨ 직무감독권 행사는 부작용이 매우 큰 양 날의 칼

나. 회피 및 재배당

▣ 법관의 직업적 양심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대법원 판례를 따를 의무

-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법관의 지위에서 가지는 직업적·기능적 양심이므로, 법관이 재판관을 함에 있어서 헌법 제19조가 정하는 자신의 개인적 양심과 헌법 제103조가 정하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적 양심을 후퇴시키고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우선시켜 재판하여야 함¹⁰⁾

☑ 정○○, 헌법학원론(2015), 1403면

국가의 권력작용인 재판을 함에 있어 법관에게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관이 가지는 이러한 개인으로서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재판하라는 것이 아니다. 법관이 가지는 개인적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법관 개인의 다양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동일한 성질의 사건에서까지 구구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것은 **재판으로서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 법관으로서의 직업적·기능적 양심에 따를 때, 하급심 판사는, ①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전체 사법부의 관점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담하고,¹¹⁾ ② 이와 같은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논증**이 필요함

■ 직업적 양심을 우선시키기 어려운 경우 ⇨ 회피 및 재배당 이용 가능

- 민사소송법 등 ⇨ 회피

▶ 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대법원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意味를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라고 판시하고 있음
- 당해 사건의 쟁점에 대해 **하급심 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법원 판례의 적용을 거부하고, 자신의 개인적 양심을 앞세우는 경우**는 “**법관과 사건과**

10) 정○○, 헌법학원론, 박영사(2015), 1403면

11) 심○○, 판례변경의 의의, 민사판례연구XXXVI, 박영사(2014), 931면

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라고 볼 여지 있음

☑ 대법원 2007.11.15. 자 2007마1243 결정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 재배당**

▶ **제26조(재배당)**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4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절의 절차에 준하여 **재배당**을 실시한다.

▶ **제14조(배당확정의 효력)**

사건배당이 확정되어 사건배당부에 등록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4.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다. **사건 신속 처리 트랙(Fast Track) 개발**

■ **필요성**

- 1심에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항소심에서의 심리가 지연되면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필요가 있음

■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

- 1심에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항소심에서는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 제2조 제3호 또는 제5호)**으로 선정함으로써 항소심에서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

☑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

제2조(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기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은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3조 제2항 각호의 중요사건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1. 처리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2. 다수당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
3.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4.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5. 그 밖에 당사자의 수,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라. 법관 연수 강화 ⇨ 법관들에게 판례의 구속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 필요성

- 대법원 판례가 동종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을 구속하는지 여부, 즉 ‘판례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직접적 구속력’, ‘사실상 구속력’, ‘준거력’ 등 논의가 분분(紛紛)하고, 법관들의 이해의 정도가 높지 않음
-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으로 의견 대립이 치열한 사안에서, ① 대법원 판례를 따르는 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판사이고, ②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사는 문제의식 있는 소신 판사라는 **왜곡된 프레임(Frame)**이 판사들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 존재

■ 내용

- 법관연수 중 경력별연수(신임법관연수 포함), 재판장연수(초임단독, 합의, 항소재판장)에서 ① 판례의 개념, ② 판례의 사정거리, ③ 판례의 구속력, ④ 영미국가에서의 선례구속의 원칙의 한국적 변용 등을 강의

- 김○○ 부장판사 사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의 무죄판결 선고 사례 등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관들 사이의 진지한 토론 유도
 - 법관들에게 판례의 구속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개인적 양심을 앞세워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사들에게 자신의 판결이 법관연수에서 강의 및 토론 자료로 사용된다는 사실 자체로 일정한 시그널(Signal)을 줄 수 있음

마. ‘한국형 선례 구속의 원칙’ 확립을 위한 연구 ⇨ 사법정책연구원

■ 필요성

- 판례의 중요성 증가 ⇨ “대륙법계 구조 하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되고 대법원의 판례에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영미법의 선례구속의 원칙을 우리나라의 법체계 하에서 어떻게 변용하여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함
 -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선례구속의 원칙은 일반적인 법원리라기보다 사법정책의 문제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는 법적 확실성(certainty), 안정성(stability), 예견가능성(predictability)이라고 설명됨¹²⁾
-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의견 대립이 치열한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하급심 판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고정 관념을 벗어나 ‘판례의 구속력’에 대한 진지한 고찰 필요

■ 내용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한국형 선례 구속의 원칙’ 확립을 위한 연구 실시
[끝]

12)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2헌마18 결정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對外泌)

2015. 1. 7.

TF

I. 검토배경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 ▣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과 함께 통진당 소속 의원 5인 의원직상실결정

- 중앙선관위 ⇨ 통진당 지방의회 비례대표 6명 의원직 퇴직 결정

나. 통진당 소속 전 국회의원 소제기

- ▣ 통진당 소속 의원들 행정소송 제기

- 국회의원 ➔ 선관위 상대로 국회의원지위확인청구

다. 검토 사항 및 검토 결과 개요

1) 현 상황이 법원에 미칠 영향 분석

- ▣ 유·불리 공존 ➔ 전략적 활용 필요

2) 현재결정의 타당성 검토

- ▣ 의원직 상실결정은 현재의 권한 없는 결정으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의원직 상실 결론도 현행 헌법과 법률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더 큼

3)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

- ▣ 각하 부적절 / 기각 또는 인용

- ①기각 시나리오

- 소의 적법성 긍정 : 현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적 지



위에 관한 분쟁이 있는바, 법원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적 판단을 할 의무를 부담(일반사법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해 분쟁이 있는 이상 일반재판권에 따라 판단을 할 의무가 있음

- 기각 이유 구성 개요(제1안) : ①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전체적인 법체계를 살펴 판단, ②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규정 해석상 강제해산은 비례대표 당연퇴직사유(현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나 중앙선관위 등 관계기관의 선언 불필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법률규정의 효력 자체에 따른 법률효과), ③나아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헌법 등 관련 규정과 여러 현실에 비추어 지역구 국회의원에도 적용 가능, ④이러한 결론은 정당해산제도의 취지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 부합
- 기각 이유 구성 개요(제2안, 보수적인 이유구성) : 정당해산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권한이고, 의원직상실 여부는 정당해산결정의 부수적 효과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음 ⇒ 부적절

● [2]인용 시나리오

- 소의 적법성 긍정 : 위와 같음. 현재의 권한 밖의 행위라는 판단이 포함될 수 있음
- 인용 이유 구성 개요 : ①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전체적인 법체계를 살펴 판단, ②헌법 개정의 연혁(의원직 상실조항 도입 및 삭제 경위에 드러난 입헌자의 의사), ③정당해산결정과 의원직 상실 문제 논리필연성 없음, ④국민주권의 이념에 충실한 국민대표성 원리가 정당기속성 보다 우위, 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에는 강제해산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비례대표의원도 자격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은 애초에 퇴직간주될 여지가 없음

II. 현재결정의 개요 및 정당성 검토

1. 현재결정 개요

가.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나. 현재 결정의 논리적 구조

1)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의원직에 대한 심판이 가능한 근거

■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의 공존

- 국민대표성 지위만 있다면 정당해산결정과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나, 정당기속적 지위가 있어 위헌정당 해산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관련 법률의 해석

- 공선법 제192조 제4항에서 정한 '정당의 해산'은 자진해산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함 → 제한 해석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률의 공백상태를 전제로 의원자격상실 여부 판단 권한

-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취지와 본질적 효력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자격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창설할 수 있다는 취지(준입법적 권한 행사 가능 입장)
-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경우에는 방어적민주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민대표성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정당기속성에 따라 정당해산과 함께 의원직도 박탈하여야 함

2)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

- 헌법수호를 위해 정당해산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은 비상적 상황이



라고 선언함 ➡ 비상적 상황에서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비상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임

■ 국회의원직 유지시의 문제점

-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
-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됨

2.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적 논의 가능성

1) 준 입법적 기능 수행의 문제

■ 헌법적 근거의 부재

- 준입법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없음

■ 입법권 침해

- 헌재는 입법기관이 아닌 위헌심사를 통해 입법권을 통제하는 기관
- 입법의 부재 역시 입법자의 영역 ➡ 부재사실이 위헌인 경우 그 위헌성을 선언하는 것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
- 입법의 흠결은 일반적 사법권을 가진 법원이 보충할 문제이지 헌법 제111조에 열거된 특정 사안에 관하여만 사법권을 가진 헌재가 할 사항은 아님
- 입법자의 의사 왜곡 및 입법형성 기회 박탈 결과

2) 국회의원의 지위에 대한 헌재 입장의 문제점

■ 지나친 정당기속성 강조

■ 국민주권 원리의 침해

-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의 민주적 정당성 ➡ 국민대표성의 중요한 근거인데, 정당기속성 때문에 이를 희생시킨다면 국민주권의 원리 침해 소지
- 특히, 헌법적 근거도 명문의 규정도 없이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희생시킨 결정은 헌법적인 정당성이 부족함



3) 비상적 상황이라는 논리의 문제점

▣ 비상적 상황인지 여부

- 다른 대체적 방어 수단의 존재
 - 국회의원에 대한 형사처벌, 피선거권 박탈, 의원직 상실 가능

▣ 현행헌법의 결단

- 1962년 헌법에 정당해산시 의원직 상실 규정을 두었다가 1972년 유신헌법에서 삭제한 이후 규정 없음 → 이는 현행헌법이 의원의 국민대표성을 근거로 정당해산만으로는 의원직이 당연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볼 여지 있음

▣ 입법자의 의도(공선법 제192조 제4항 관련)

- 해석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해산시 퇴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지역구원의 퇴직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 → 지역구 의원이 퇴직간주되는 경우는 없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른 대체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입법자들은 별도의 의원직 박탈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가능

4) 정당해산의 본질적 효력이라는 논거의 문제점

▣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음

- 현행법상 입법자들은 개인의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는 형법 등을 통해 방어하고,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는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방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현행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으로 볼 수 있음

▣ 헌법재판소가 우려하는 위헌적 활동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의 관련 규정을 통해 방어할 수 있음

3. 학계의 입장



가. 학설의 소개

1) 지위유지설

- 국민대표성(민주적 정당성) /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헌법상의 정당성
- 국회의 자율사항 / 연혁적 측면
-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의 대체 가능성
- 공선법 제192조 제4항 등 현행법의 입법의도

2) 절충설

- 제1설 - 입법을 통해 자격상실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견해
- 제2설 - 비례대표의 경우 의원직 상실 견해(구○○)
- 제3설 - 선별적 자격상실 견해(최○○, 정○○)

3) 지위상실설

-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
- 우리사회의 현실 고려

나. 검토의견

■ 학계 태도에 대한 검토

- 국내의 다수 견해는 독일의 1950년대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판례와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임¹⁾
 - 당시 독일은 전후의 냉전체제 및 나치정권 출현 등 특수한 헌정사적인 경험이 있었고 이를 통해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론 구성이 필요하였음
 - 1960년대 이후 독일에서도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활용된 바 없음
-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도입되기는 어려운 내용임

1) 정○○, 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쟁점, 공법연구 제42집 제3호(2014. 2.), 132쪽 참조



▣ 국민대표성에 입각한 해석의 필요성

- 정당기속성의 헌법상 한계
 - 정당기속성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국민대표성)와 충돌하거나 이를 대체하여서는 안됨
- 국민대표성에 기초한 자유위임 원리의 우월성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위헌정당을 해산하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적인 근거가 빈약함

▣ 위헌정당해산제도상 필연적인 효력인지 여부

- 위헌정당해산제도는 헌법수호를 위한 방어적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음 ➡ 대의제 희생시킬 만한 상위 원리 아님
- 논리필연성도 빈약함

▣ 비교형량상의 문제점

- 대체 수단이 존재하므로, 이를 통해 헌법 수호가 가능함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희생시키는 것은 또 다른 헌법침해에 해당
- 특히 이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침해 우려

▣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됨

- 헌법상 의원의 자격심사와 제명은 국회의 자율권 영역 ➡ 법원 제소 불가 (권력분립원리)
- 헌법상의 통치구조 기본원리인 대의제 및 권력분립원칙상 법적인 근거 없는 의원직 상실 결정은 정당화되기 어려움
- 국민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지 못한 권력이 직접 위임받은 권력인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 역시 위 원칙에 어긋남

▣ 현행법의 입법의도



- 정당법의 내용

- 해산된 정당의 대표 및 간부에 대한 유사정당, 대체정당 창설 금지규정, 명칭 사용 금지규정, 재산 몰수 및 국고귀속 규정 등을 자세히 두고 있음
- 공선법 제192조 제4항의 정당해산에 강제해산이 제외된다고 볼 근거 없음(양 ○ 교수 입장)

- 현실적인 문제

- 실제 위헌정당 소속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당내부에서 위헌적인 정당 활동을 반대하면서 노선투쟁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의원 등 다양한 입장의 의원들이 공존할 수 있음

III. 현 상황이 법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현재 결정 이후 언론 동향 분석

1) 해산결정으로 인한 대법원과 현재의 역학관계 관련 보도

- 현재가 정치·경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결정들을 내리면서 그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다수 존재
 -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현재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것에 다수의 언론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가 대법원의 권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도 다수 존재함
- 현재 결정에 대한 평가는 언론사마다 상반되나, 대법원이 현재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동의하고 있음
 - 이석기 상고심 판단에 현재 결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현재의 결정이 성급했다는 취지의 비판 기사도 일부 존재함
- 이번 결정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에 관한 논란도 커진 것으로 보임



- 현재 재판관 구성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현재 재판관들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다수 존재
- 대법원장의 3인 지명권을 문제 삼는 취지의 기사도 다수 존재

2) 의원직 상실 선고에 대한 행정소송 관련 보도

- 현재 결정 직후 통진당이 조만간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다수의 언론이 보도하고 있음
- 언론들은 현재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음

- 다수의 법조계 인사가 동 소송이 각하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됨

- 최○○ 변호사, ‘행정소송은 행정행위와 같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것. 법원·현재의 판결은 행정소송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 이○○ 중앙대 명예교수, ‘행정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일선 법관들은 심증판구 각하 처리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위헌정당 해산시 의원직을 유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발언’

- 실제로도 2004, 2007, 2008년에 접수된 현재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모두 각하되었던 바 있다고 언론 보도(동아일보)

- 국회의원 지위확인 청구의 인용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부정적인 시각이 다수

- 통진당 측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이어서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

- 임○○ 서강대 로스쿨 교수, ‘정당 해산 결정시에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것은 현재의 견해 표명에 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원직 상실 처분이나 국회 사무처의 의원실 정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
- 김○○ 민변 변호사,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취소 심판이나 항고 소송 같은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 반면, 다수의 언론은 동 청구의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음

- 동 소송은 당사사소송인 공법상 지위확인 청구소송으로 볼 수 있음
- 행정청이 아닌 현재는 소송대상이 될 수 없고, 선관위는 의원직 상실을 단순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피고라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이 경우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지위확인을 구하여야 하는데 현재 결정이 무효라는 선결 조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음
- 선거법을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명문화되지 않은 법률에 대한 심판 청구가 될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판단 주체가 다시 현재가 되기 때문에 구조상 본안소송이 성립되기 어려워
- 김○○ 동국대 법대 학장, 이○○ 중앙대 명예교수, 노○○ 경희대 교수 등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

▣ 현재의 의원직 상실 주문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뉨

- 여러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주류 여론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김○○ 명지대 석좌교수, ‘현행 헌법에 국회의원직 상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제명처분으로만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할 것’
- 장○○ 고려대 로스쿨 교수,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인데 의원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
- 이○○ 변호사, ‘원칙적으로 입법사항이지만 법에 규정이 없어 현재가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
- 성○○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입법 정책적으로는 의원직 상실이 바람직’
- 이○○ 중앙대 명예교수, ‘비례적인 상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역구는 당만 보고 투표한 것이 아니라서 논쟁이 될 소지는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판결이 내려진 경우 다룰 방법은 없어’
- 노○○ 경희대 법학과 교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들어’

**▣ 의원직 상실 선고가 타당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불복은 어려워 보인다
다는 논평이 주류**

2. 현 상황이 법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전략 검토

가. 법원에 대한 영향 총론

1) 대법원과 현재의 역학관계에 대한 여론

- 현재가 사회적인 임팩트가 큰 사건 잇따라 선고하면서 위상 격상
- 법원이 현재가 한 결정에 대한 뒷수습을 하는 형국 ➡ 진보적인 여론은 법원과 현재가 청와대와 함께 보수의 울타리 안에 함께 있는 것으로 평가
- 여론 총평 ⇨ ①법원은 현재 결정에 반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②현재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행정소송 각하 당연시)

2) 긍정적인 측면



▣ 현재 결정 또는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기회

- 현재의 위상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을 흔들 수 있는 기회
- 불복방법이 없는 현재의 권한 없는 결정(한정위헌, 재판소원, 가처분 등) 또는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밝힐 수 있는 기회

▣ 재판취소(형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방지를 위한 압박카드 활용 가능

- GS칼텍스 사건 등 재판취소 할 경우 통진당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묵시적 압박카드로 활용
-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법원의 입장 표명)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전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GS칼텍스 등 재판소원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는 카드로 활용 가능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는 카드를 쥐고 전략적 활용 방법 모색 가능

▣ 행정소송 영역 확대 모색할 수 있는 기회

- 처분성, 소익,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영역

▣ 민변 등 현재 결정에 비판적인 세력 우군화 모색 기회

- 현재 민변이 상고법원 추진 강하게 비판 ➡ 민변 소속 변호사(이○○ 포함)들이 정당해산 사건 대리
- 이번 기회를 활용한 민변 등 우군화 전략 모색

3) 부정적인 측면

▣ 법원의 입지 및 운신의 폭 축소 ➡ 현재결정 사후 처리 모양새(역학 관계에 부정적 영향)

- 사안의 성격
 - 국민의 65%가 현재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 사안



- 다른 판단의 여지를 보일 경우 보수언론과 헌법학계의 전방위 집중 포화를 맞을 가능성. 헌재에 우호적인 헌법교수들의 비판도 예상

- 내란회합의 성격에 대하여 헌재가 선행 판단을 함에 따라 이석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택 가능성 축소
- 이석기 사건 및 행정소송의 결론이 헌재의 판단과 완전히 일치할 경우 ➡ 민변 등 진보계열의 대법관 다양화 및 대법관 증원 요구가 더욱 촉발될 우려

▣ 법무부와의 관계 부담

- 상고법원 법안 처리 및 재판소원 사건 수습을 위해 법무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GS칼텍스 관련 환급소송 수행 및 국세청 설득, 형 집행 지휘 등)
- 행정소송 일련의 과정에서 헌재 입장과 배치되는 심리 또는 판결을 할 경우 법무부와의 관계 악화로 향후 원만한 협조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부담 ➡ 헌재의 짐을 고스란히 법원이 떠안은 형국

- 각하할 경우 : 향후 권한 없는 헌재 결정 및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원천 차단 ➡ 헌재의 상대적 우위 용인 / 헌재의 사법권 침해 제어 불가 우려
- 기각할 경우 : 국민 일반은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명확하게 준별하지 못하여 각하한 경우와 같은 인식을 할 우려(이유 구성 및 보도에 세심한 배려 필요)
- 인용할 경우 : 여론의 부담

▣ 보수·진보세력 쌍방의 여론 공세

- 행정소송 제기 및 심리 과정 중 내내 이슈와 관심이 될 가능성(부담) : 특히 보수 언론의 여론몰이를 위한 법원 압박 우려

나. 대응에 있어 고려할 사항



■ 국민여론의 양면성

- 현재 결정에 대하여 65%가 지지의견 ➡ 현재결정에 배치되는 판단 부담
- 반면, 현재와 같은 분위기 및 북한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35%가 현재결정에 비판적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 있음 ➡ 이 35%는 나름의 근거에 기초한 진성 의견일 가능성이 높음(의원직 상실에 있어서만큼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할 경우 현재 결정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더라도 국민 여론에 크게 반하지 않을 가능성 있음)

■ 현재의 결정은 그 자체로 불가쟁·불가침이라는 인식 불식시킬 필요

- 특히 결론을 떠나서 '권한 없는 현재 결정에 대한 쟁송가능성'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인식시킬 필요
 - 이를 인식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향후 법원에 대한 역풍 ⇨ 한정위헌, 재판소원 문제에 있어서 법원의 대응논리 및 대응수단 잃게 될 수 있음
- 다만, 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재판결과에 대한 쟁송가능성 역풍에 유의

■ 법원의 입장을 표명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주어진 시간 및 기회(카드) 활용 가능

- 1심 판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활용 가능(여론 동향, 정세 등 파악 후 전략적인 선택 가능)
- 1심 이후에도 심급이 있다는 점 심분 활용할 필요(1심 판결로 여론을 살피고 상급심에서 최종 판단)

■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에 있어 정치한 이론 구성 필요

- 각하할 경우 ➡ 명시적 권한 유무를 떠나서 현재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불가능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신중한 이론 구성 필요
- 기각할 경우 ➡ 극히 유의할 필요 있음
 - 현재에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이 상실되었다고 볼 근거 빈약(현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 이외에 의원직이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국가기관의 처분이나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함) ⇨ 헌법과 법률 해석 논리로 극복 가능

-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향후 헌재의 권한 유월을 통제할 방법이 없음
- 위와 같은 문제점을 유의한 정치한 이론 구성이 필요
- 인용할 경우 ➡ 최대한 기존의 법리를 활용하여 비난 가능성 축소 필요
 - 인용을 위한 이론구성은 오히려 수월한 편임
 - 법리적으로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만 여론의 집중 포화를 피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법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유리함

IV. 행정소송 검토

1.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 소송형태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여부가 문제됨

- 소송형태: 의원직 상실 결정이 무효임을 전제²⁾로 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
-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³⁾으로 경정 필요
- ‘확인’의 이익⁴⁾ 필요

▣ 가구제 형태: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한 민사집행법 준용) ⇒ 판례상 불허

2. 행정소송에 대한 예상과 그로 인한 파장 검토

2) 여기서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도 포함하는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반드시 ‘처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3) 주무관청은 국가소송의 총괄담당인 ‘법무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



가. 소송요건 및 본안판단 상의 주요 쟁점

▣ 사법판단의 형식을 띤 현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효력 여부(유·무효)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현재 결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능성 ⇒ 법원의 권한·관할, 현재 결정의 속성 등 문제

☞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적으로 열거 ⇒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법원에 속하는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현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단지 현재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것에 불과함

☞ 현재의 견해 표명에 불과한 '의원직 상실 결정'으로 인해 원고들의 의원직의 상실 여부가 이 사건 소로써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된 이상, 법원은 일반적 재판관할권의 행사로서 국회의원의 직위와 관련된 전체적인 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현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고 분쟁을 해결할 임무가 있음

- 현재 결정의 '무효' 기준 및 근거 ⇒ 헌법 및 법률의 근거 없는 판단의 유효성 문제, 현재의 준입법적 권한 행사 가능 여부

☞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권한 없음) '의원직 상실 결정'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음 ⇒ 권한 없는 주체의 행위로서 무효

☞ 특히,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의 명목 하에 헌법과 법률의 명문의 규정 이 없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입법부와의 관계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입법자의 의사



와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입법 형성권을 제약하는 등 또다른 입법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법원이 의원직 상실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현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 무효의 주된 논거가 헌법 및 법률의 근거가 없음이라면, 법원은 법률해석권에 따라 의원직 상실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 의원직의 상실 여부가 이 사건 소로써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된 이상 법원은 국회의원의 직위와 관련된 전체적인 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능한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임무가 있음
- ☞ 현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무효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현행 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의원직 상실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여전히 법원의 판단권 내에 있다고 할 것임

나. 예상

1) 예상 주문 ①: 각하 ⇒ 부적절

■ 상정 근거

-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하거나 판단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각하할 가능성 있음 ➡ '각하' 결론의 근거로, '현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할 가능성 있음
- ☞ 그러나 당사자소송은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도 허용되므로(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현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반드시 '행정청의 처분'임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될 것임 ⇒ 즉, '현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만 전제가 될 뿐이므로, 당해 재판부가 이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은 법리상 긍정될 수 있음



▣ 영향 및 파장

- 현재 결정 지지여론에 부합하나, 현재 결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부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기대했던 반대여론에는 부응하지 못하게 됨
- 결론이 '각하'인 관계로 외견상 법원이 현재 결정의 불가쟁성을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질 우려 ➡ 현재의 한정위헌결정이나 재판취소 등의 문제에 있어서 법원이 수세에 놓이게 될 우려
- 특히 재판부가 '각하' 결론의 근거로 위 두 가지를 들 경우 법리 검토 오류로 인한 비난 가능성
-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상 대법원이 권리구제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도 적어도 '각하'의 결론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예상 주문 ②: 기각

▣ 예상 근거

- 소송형태의 적법성 인정 : 당사자소송은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도 허용되므로(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현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반드시 '행정청의 처분'임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됨
- '확인의 이익' 증명 : 의원직 상실에 따른 국고보조금 환수, 후원회 활동의 금지, 세비 지급 중단 등 국회의원 지위에 따른 특권 상실, 수사 가능성 등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
- 현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소송형태의 적법성'이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고, 그 유·무효 판단은 본안 판단의 사유일 뿐임
- ☞ 현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관장사항 외의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법원은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해 분쟁이 있는 이상 일반재판권에 따라 판단을 할 의무가 있음



- 가치분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안 판단시까지 판단을 미룰 가능성 큼 → 본안판단이 있는 후 보전의 필요성 부정으로 '기각' 결정 가능

▣ 본안판단 이유 구성

-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근거인 ①국회의원의 정당기속성의 현실, ②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본질적 효력, ③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5)의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하는 점⁶⁾ 등을 긍정할 경우 '기각' 주문이 나갈 수 있을 것이나, 현재의 설이나 논거를 그대로 차용한 듯한 인상은 회피할 필요 있음

☞ **기각 이유 설시례** : ①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에 관해서는 현행 헌법과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원의 직위와 관련된 전체적인 법체계를 살펴 원고들의 의원직 존재(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 점, ②헌법의 차원에서, 연혁적으로 1962년 헌법은 제38조에서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라는 규정을 두었으나 1972년 헌법에서 위 규정이 삭제된 이래 헌법에는 소속정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입법자의 의사가 반대로 바뀐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법률의 차원에서, 소속정당의 해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직위에 관해서 가장 근접한 현행법 규정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규정이 있는바,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는데, 해산 외의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합당'이나 '제명' 모두 당해 소속 정당이 자율적으로 존속하고 임의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임에 비추어 여기서의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받아 '강제해산'되는 경우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그렇다면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의 강제해산은 위 공

5) 공직선거법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의 결정이나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재판부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근거 제시 및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의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현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나 중앙선관위 등의 관계기관의 선언을 기다리지 않고도— 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법률규정의 효력 자체에 따른 법률효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결과는 정당해산제도의 취지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도 부합하는 점, ⑤나아가 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소속 정당의 강제해산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의 당연퇴직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재정적·기술적 도움으로 의원에 당선되는 등 그 출발점에서부터 정당예속성이 지나치게 높고, 정당기울보다는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유투표 내지 교차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사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나 지역구국회의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바, 소속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해산이 되는 마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과 달리 취급하여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의 자유위임원칙이나 국민대표성을 이유로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및 방어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현재는 의원직 상실 결정의 타당성의 근거가 되는 논거와 분석틀을 동시에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의 근거로 논의하고 있고 그 주된 논거가 바로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취지·본질적 효력’과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이므로, 법원으로서의 현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권한 없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분안판단으로 나아가는 마당에 그 분안의 결론을 ‘기각’이라고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든 위 주된 논거를 그대로 차용하게 되면 자칫 현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비취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이유구성이 ‘인용’ 결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조심스러운 상황임

■ 영향 및 파장

- 확인의 이익 설시를 통해, 현재와 대비되는 법원의 역할에 대해 필요한 설시가 가능(실질적 법치주의 상 법원의 권리구제의 최후보루의 위상, 외형상의 현재 결정에 따른 권리침해 가능성 상존, 현재 결정은 단심으로서는 불복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점 지적 등)
- 다만, 필요 이상의 설시를 할 경우 대법원과 현재 사이의 위상 다툼이 되거나 연쇄적 순환고리(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이 반복되는 현상 등)가 될 우려 있음



- 재판부가 현재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차용할 경우, 법원이 현재의 논리와 판단을 답습한다는 인상이 들 수도 있고, 현재의 설시상의 문제점 내지 모순점을 고스란히 승계하게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음
- 또한 국민들이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법원이 현재보다 하위에 있다는 인상을 주거나, 권한 없는 현재 결정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이 차단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3) 예상 주문 ③: 인용

■ 예상 근거

- 당사자소송의 적법성이나 확인의 이익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긍정
-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은 소명 여하가 아닌 직접적인 '법리판단'과 연결되는 것이므로, 가처분 신청재판부에서 본안 판단시까지 판단을 미룰 가능성도 큼 → 본안판단이 있는 후 보전의 필요성 부정으로 '기각' 결정 가능

다만, 법원이 가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가처분 신청재판부에서 피보전권리로서 '현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효력을 다룰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정면으로 다루면서 '인용' 결정을 하는 흐름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이 경우도 현재와 대비되는 법원의 역할에 대해 필요한 설시가 가능할 수 있음(실질적 법치주의 상 권리구제의 최후의 보루, 현재 결정에 따른 권리침해 가능성 상존, 현재 결정은 단심으로 불복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점 지적 등)

■ 본안 판단 이유 구성

- ☞ 인용이유 설시례 : ①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는지에 관해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우리나라는 1962년 개정 헌법(제3공화국 헌법) 제38조에서 의원직 상실 조항을 규정하다가 1972년 개헌(유신헌법) 시 위 조항을 삭제한 점에서 의원직 상실을 배제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로 볼 수 있는 점, ③정당해산결정과 의원직 상실 문제는 반드시 논리필연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국민주권의 이념에 충실할 때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임된 국회의원은 소속정당 해산만으로는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이나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이 부득이하게 ‘희생’될 사안은 아니라고 볼 것인 점, ⑥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에는 강제해산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비례대표의원도 자격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은 애초에 퇴직간주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헌법재판소법 제58조 제2항은 국회차원에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를 위한 근거규정 정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영향 및 파장

- 국민 대다수의 여론(헌재 결정에 65% 이상 찬성하는 상황)과 배치되는 듯한 결론으로 인해 보수언론을 통한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질 수 있음
- 대법원과 헌재 사이의 권한 다툼이나 역학관계 상의 힘겨루기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음
- 헌재의 결정을 법원의 재판으로 무효선언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역으로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거나 한정위헌결정이 가능하다는 부정적인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

4) 예상 주문 ④: 일부 인용(지역구), 일부 기각(비례대표)

■ 예상 근거

- 당사자소송의 적법성이나 확인의 이익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긍정됨임
- 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경우와 비례대표로 당선된 경우를 나누어, ①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민대표성이 우위에 있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적용이 없으므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기속성이 우위에 있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원직 상실의 타당하다는 결론⁷⁾이 가능함

■ 본안 판단 이유 구성

- 이유 실시례 :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위 인용결론의 ①~⑦의 이유

7) 구○○ 교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정당대표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정당해산결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만이 의원신분을 상실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설시가 가능할 것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위 기각결론의 ①~③과 같이 현재의 논리와 유사한 설시를 하면서도 그대로 차용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설시가 필요함

■ 영향 및 파장

- 일부 인용을 통해 현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과는 매우 다른 시각의 결론을 냄으로써 대법원과 헌재 사이의 힘겨루기 논란, 재판소원이나 한정위헌결정에서의 부정적인 빌미 제공 등의 악영향은 —전부인용보다는 완화된 형태일 것이지만 여전히—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언론에 자주 노출되어 국민에게 인지도가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이석기, 김재연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결론을 유지하게 되어 여론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반대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결정 무효선언을 하게 되어 헌법학계 및 일부 법조인들의 헌재결정의 법리적 문제점 지적을 받아들였다는 절충적인 결론으로 평가될 수도 있음
-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인용결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 대다수의 여론(헌재 결정에 65% 이상 찬성하는 상황)과 배치되는 듯한 결론으로 인해 보수언론을 통한 사법부에 대한 비난은 여전할 수 있음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내부용 · 대외비)

2015. 2. 12.(목)

1. 검토 배경

- 현재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각급 선관위가 퇴직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나 **지역구 지방의원은 의원직 유지하고 있음**
- 그런데 비례대표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에 대한 행정소송의 결론과 이유 구성에 따라 지역구 지방의원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①이유 구성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원의 지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②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자치단체장의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소제기 가능성을 검토함

2. 통진당 지방의원 및 행정소송 현황 ⇨ 총 37명

1) 지방의원 현황

- **지역구 : 31명**
 - 구·시·군의원만 있음(시·도의원은 없음)
 - 부산(1명), 광주(9명), 울산(9명), 경기(1명), 충북(1명), 전남(4명), 경남(6명)
 - 서울 등 그 이외 지역은 없음
- **비례대표 : 6명**
 - 시·도의원 비례대표 3명 : 광주(1명), 전북(1명), 전남(1명)
 -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3명 : 전남(3명)
- **상세 현황 ➡ 별첨 자료 참조**



2) 행정소송 현황

▣ 국회의원 소제기 현황

- 2015. 1. 6.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320(행정13부 ➡ 재판장 반○○ 부장판사 / 배석 김○○, 김○○ 판사)
- 원고 ➡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인(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포함)
- 피고 ➡ 중앙선관위
-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

▣ 지방의원 소제기 현황 ➡ 총 3건(광주 / 전주 / 서울행정)

- 원고 ➡ 지방의원 비례대표 6인
- 2015. 1. 7. 각급 선관위를 피고로 하여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소제기
 - 광주지법 2015구합10025 사건 : 광주·전남 소재 비례대표 5인(광주지법 제1행정부 ➡ 재판장 박○○ 부장판사 / 배석 박○○, 신○○ 판사)
 - 전주지법 2015구합63 사건 : 전북 소재 비례대표 1인(전주지법 제2행정부 ➡ 재판장 은○ 부장판사 / 배석 유○○, 문○○ 판사)
- 2015. 2. 2. 중앙선관위를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제기
 - 국회의원 사건 재판부에서 함께 담당
- 소 종류
 - 각급 선관위 상대 : 퇴직처분취소소송(주위적) + 의원지위확인(예비적)
 - 중앙선관위 상대 : 퇴직처분취소소송

3. 행정소송 결론이 지역구 지방의원에게 미치는 영향

1) 행정소송이 인용될 경우 ⇨ 문제 없음

- ▣ 국회의원·지방의원 행정소송 인용할 경우에는 모든 의원 의원직 유



지하므로, 지역구 지방의원의 현재 지위에 아무런 영향 없음

2) 행정소송이 기각될 경우(의원직 상실)

■ 국회의원 소송의 경우

● 기각이유 구성 제1안에 의할 경우

- 기각이유 개요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규정 해석상 강제해산은 비례대표 당연퇴직사유(현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나 중앙선관위 등의 관계기관의 선언 불필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법률규정의 효력 자체에 따른 법률 효과)이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헌법 등 관련 규정과 여러 현실에 비추어 지역구 국회의원에도 유추 적용된다는 이론 구성
- ①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비례대표 ➡ 위 공선법 규정의 효력으로 의원직 당연 상실
- ②지방의원 지역구 ➡ 별도 판단 필요(국회의원 직위와 유사한 성격으로 볼 경우 의원직 당연 상실 / 국회의원 직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경우에만 다른 판단 가능)

● 기각이유 구성 제2안에 의한 경우

- 기각이유 개요 : 정당해산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권한이고, 의원직상실 여부는 정당해산결정의 부수적 효과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음
- 국회의원 ➡ 현재의 의원직 상실선고가 있었으므로 의원직 상실
- 지방의원 ➡ 별도 판단 필요(현재의 상실선고 없었으므로 일응 의원직 유지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공선법 제192조 제4항의 해석 등에 따라 의원직 상실도 가능)

■ 지방의원의 경우

● 기각이유 구성 제1안에 의할 경우

- 기각이유 개요 : 공선법 ‘해산’ 자진해산만을 의미



- 비례대표 지방의원 ➔ 위 규정의 효력으로 당연 퇴직
- 지역구 지방의원 ➔ 별도 판단 필요(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효력만으로는 퇴직되지 않음)

- 기각이유 구성 제2안에 의할 경우

- 기각이유 개요 : 현재의 의원직 상실결정이 없더라도 의원직 상실이 정당해산의 본질적 효과이므로 의원직 상실
- 비례대표 · 지역구 불문하고 전부 의원직 상실

3) 문제되는 부분 정리

- ▣ **국회의원 소송에서 기각 이유 제1안에 의할 경우(공선법 규정 +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 지역구 지방의원직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여지가 큼(반대 견해로는 국회의원과의 지방의원직의 성격 차이를 부각하여 상실시키지 않을 수도 있음)

- ▣ **지방의원 소송에서 기각이유 구성 제2안에 의할 경우(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의 본질적 효과)**

- 지역구 지방의원도 당연히 의원직 상실

4) 국회의원과의 지방의원 행정소송 논리를 일치시킬 경우

- ▣ **국회의원 소송 기각 이유 제1안을 채택하고, 지방의원 소송 기각 이유 제1안을 채택하여야 논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 현재와 법원과의 관계 때문에 현재의 의원직 상실결정은 효력이 없는 견해표명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 대하여 의원직을 상실시켜야 하기 때문임

- ▣ **이 경우 논리적으로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원직도 공선법의 효력으로 당연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여지가 큼**

4. 논리일관성을 유지할 경우 문제점 및 대응방안



가. 문제점

- 국회의원소송과 지방의원소송 기각 논리를 제1안으로 일치시킬 경우
➔ 현재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구 지방의원도 의원직이 당연 상실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큼

- 의원직 상실이 정당해산의 본질적 효과라고 볼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이로 인한 문제점 ⇨ 1) 의원직 유지에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는 현재 상태를 뒤집는 결과

나. 해결 방안

- 1) 제1안 : 현상 유지 방안(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직위의 성격 차이로 논리 구성)

■ 논리 구성

-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공선법 규정 때문에 당연 상실되나, 지역구 지방의원 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가 없음
- 지역구 국회의원은 공선법 규정 유추적용할 수 있으나 지방의원은 행정적 성격이 강하므로 유추적용 불가
- 이에 따르면 지역구 지방의원은 의원직 유지할 수 있음

■ 문제점

-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행정적 성격이 국회의원과 본질적 차이를 둘 만큼 큰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논리적으로 지나치게 작위적인 면이 있음(지역구 국회의원 유추적용도 논리적인 매끄러움이 부족할 수 있는데, 나아가 지역구 지방의원에게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다소 어색함)

- 2) 제2안 :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시키는 방안

■ 방안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구 지방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끔 하는 방안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지방의원 사이에 세비 지급, 사무실 제공 등 많은 권리관계가 있으므로, 단체장이 지역구 지방의원 상대로 의원직위 부존재 확인 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게끔 하여 의원직이 상실되었음을 소송으로 확인하는 방안

■ 문제점

- 법원 판결의 논리일관성을 유지하고, 현재와의 관계에 있어서 법원의 의도대로 사건을 풀어갈 수는 있으나, 현재 지역구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경우 새로운 분란이 야기될 수 있음
-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제소를 하게 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 소제기 후보지역 검토

- 보수적 색채가 강하고 여당이 단체장인 지역 우선 검토 ➡ 울산과 경남 지역(경기, 충북, 광주전남 배제)
 - 울산광역시 9명
 - 경남 6명
 - 부산 1명
- 다만, 울산의 경우 의원수가 많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 등 진보 진영의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부적절할 수 있음
- 경남 지역 중 한 곳이 가장 적절해 보임



5. 지방의원 자치단체별 정리표

통진당 의원명	소속 광역단체	소속 기초단체	기초단체 장	기초단체 장 소속 정당
노정현	부산광역시	연제구	이위준	새누리당
이대행	광주광역시	서구	임우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태진				
김은아		남구	최영호	새정치민주연합
배진하				
고영봉		북구	송광운	새정치민주연합
소재섭				
김현정				
김선미				
정진아	광산구	민형배	새정치민주연합	
이효상	울산광역시	중구	박성민	새누리당
조남애		남구	서동욱	새누리당
김만현		동구	권명호	새누리당
홍철호				
이생환		북구	박천동	새누리당
안승찬				
윤치용				
강진희				
김민식	울주군	신장열	새누리당	
안소희	경기도	파주시	이재홍	새누리당
김상봉	충청북도	진천군	유영훈	새정치민주연합
유영갑	전라남도	순천시	조충훈	무소속
이복남				
백성호		광양시	정현복	무소속
윤석현		화순군	구충곤	새정치민주연합
강영희	경상남도	창원시	안상수	새누리당
정영주				
김석규				
송순호				
류재수		진주시	이창희	새누리당
김주석		함안군	차정섭	새누리당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2015. 9. 15.

사법정책실

1. 개요

가. 사건 : 전주지법 2015구합407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

나. 당사자 / 재판부

- 원고 : 이현숙(통진당 소속 전라북도 의원)
- 피고 : 1. 전라북도의회의장 2. 전라북도
- 재판부 :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 부장, 주심 강○○)

다. 사건의 진행 경과

- 2015. 7. 22. 1회 변론기일 ⇨ 변론종결, 선고기일 지정, 2015. 9. 16.
- 선고기일 변경 ⇨ 2015. 11. 25.

2. 판결 결과 예상

■ 당초 '청구인용'이 예상되었음

- 본안에 대한 직접적 판단 예상됨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적법하게 제기
- 재판장의 잠정적 심증 확인(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연수원 동기)
- 2015. 9. 14. 오후 늦게 선고기일 변경

■ 예상되는 '인용' 이유 구성(상세한 내용은 별지 1 참조)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소정의 '해산'에는 '자진해산'은 물론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강제해산'도 포함됨¹⁾

1)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 지방의원의 행정적 성격
- 법무부 역시 통진당 해산청구 당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청구를 하지 않았음²⁾
- 독일의 사회주의제국당 해산 판결 당시에도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위가 상실되지 않았음

▣ 청구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기각’ 이유의 실시예는 별지 2 참조)

3. 청구인용 시 예상되는 반응 및 대처방안

가. 예상되는 반응

▣ 정치권

- 여당
 - 김진태, 김도읍 등 검사 출신 법사위원 중심으로 대법원 및 각급 법원 국정감사장에서 강한 질타 예상됨(cf. 광주고법 국감일 : 판결 선고 전달인 9. 15.)
 -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청구를 하지 않은 법무부 입장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사법부 공격의 소재로 삼을 것으로 보임
 - 공격의 주된 목적은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결과를 원고 청구기각 쪽으로 압박하기 위해서일 것임
- 야당
 - BH 공격의 소재로 삼으면서 통진당 해산결정의 부당함을 부각시키려 할 것임. 다만, 총선 정국을 앞두고 통진당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야당 입장에서는 일회성 공격 소재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언론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 2) 통진당 해산청구 사건(2013헌다1)에서 정부는 2014. 1. 7.자 준비서면에서 “국회위원의 경우 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불문하고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본 반면, 지방의원의 경우 행정영역에 속하므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본건 원고 대리인(이○○ 변호사)은 위 준비서면을 원고에게 유리한 서증(갑 7호증)으로 제출하였음



- 조·중·동 등 주류 언론
 - 지방의원 1인의 지위 상실 여부가 미치는 파급력 크지 않고, 법무부가 지방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크게 이슈화할 가능성은 낮음. 다만, 국정감사에서 해당 판결의 문제점 지적하는 여당 법사위원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부각시킬 가능성 있음
- 조·중·동 등 주류 언론 역시 국회의원 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것으로 보임
- 조·중·동 논조와 부합하지 않는 후속 하급심 판결이 이어질 경우 법원 비판 아이템 중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 있음
- 한겨레, 경향 등 진보 매체
 - 현재 결정의 의미를 축소하기를 희망하는 진보 언론 입장에서는 좋은 소재임
 - 특히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이 헌법·법령상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해 온 점에 비추어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됨

■ 법무부·검찰

- 법무부 스스로, 지방의원의 경우 행정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에 '강제해산'이 포함된다는 해석은, 국회의원 지위확인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용 판결을 위한 논리적 선결문제이므로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임

나. 대처방안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성격상 차이, 법무부 역시 지방의원에 대해서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을 청구하지 않았음을 강조**
- **현재 결정 취지와 크게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 강조**
 - 현재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의미에 관하여 “정당이 스스로 해산하는 경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강제해



산 시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취지와 그 제도의 본질적 효력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 직위 상실된 통진당 국회의원 중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음. 헌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의 법적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찾지 않았음은 분명함(즉, 제192조 제4항에서 말하는 '해산'이 '자진해산'만을 의미한다고 명시적 해석을 하지는 않았음)

- 따라서 비례대표 지방의원 소속 정당이 강제로 해산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의해 당연히 의원직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헌재 결정과 모순되는 것 아님

▣ **지방 언론의 몰이해·억측에 기인한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 공보관을 통한 적극적 대응 필요**

- 선고 직후 백브리핑 등을 통해 해당 기자가 사건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별지 1]

청구인용 판결에서 제시될 수 있는 논리(상세)

▣ 정당해산 결정과 의원직 상실 사이에 논리적 필연성 없음

- 이 논리는 현재가 제시한 국회의원직 상실 논거와 정반대 취지임. 즉 지방의원의 행정적 성격을 강조한다면 위 논거를 반드시 청구인용의 논거로 삼아야 할 필요도 없음

▣ 지방의원의 국민(지역)대표성 > 정당기속성

- 국회의원에 비해 정당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강조

▣ 공직선거법상 해산에는 강제해산이 포함됨

- 비례대표 퇴직 여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에 강제해산도 포함된다고 설시하는 것이 필수적 ➡ 비례대표 의원의 자의적 당적 변경 방지를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공선법상 '해산'을 자진해산과 강제해산으로 나누어 볼 이유가 없음

▣ 지방의원의 행정적 성격

- 법무부는, 지방의원은 행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위헌정당 해산으로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 법무부가 원용한 독일 사회주의제국당 사건에서 연방의회의원과 주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는 영역이 아니라 '행정영역'에 속하므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음
- 독일의 사례
 - 다만,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의원의 성격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점이 있으므로 위 논리를 그대로 원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음
 - 다만, 원고 청구를 인용함에 있어, 위 논리만을 독자적 근거로 하지 않고 다른 논리들을 보완하는 논리로 원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별지 2]

청구기각 판결에서 제시될 수 있는 논리(상세)

■ 제1안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소정의 '해산'이 '자진해산'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방안

- 기각 이유 설시례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은 당내 노선투쟁에서 패배한 소수자를 보호하고 의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당적이 이탈·변경되는 경우까지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나아가 위 조항이 정부의 청구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정당을 강제해산하는 경우에만 소속 정당 의원의 의원직을 유지시키는 것을 당초의 입법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해산 외의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합당'이나 '제명' 모두 당해 소속 정당이 자율적으로 존속하고 임의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임에 비추어 여기서의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받아 '강제해산'되는 경우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제2안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소정의 '해산'에 '자진해산'은 물론 '강제해산'도 포함된다고 보는 방안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에 강제해산도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여전히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불문하고 정당해산이 된 정치적 현실, 현행 법규 해석을 통해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헌법상 정당해산 시 의원직 상실 규정이 삭제된 것만으로는 입법자 의사가 변경된 것은 아님
- 정당해산심판결정이 된 마당에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및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옳지 않음

■ 검토 : 제2안은 현재의 스탠스를 그대로 답습하고 논리적으로도 매끄럽지 않아 부적절함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2018. 6. 5.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은 VIP의 몫 ⇨ **BH의 입법 협조 획득이 절대적**
- 상고법원 입법은 **CJ 최대 역점 사업**이자 사법부의 가장 중차대한 추진 과제 ⇨ ∴ **입법 실패는 ① 대외적으로 사법부 위상 추락, ② 대내적으로 대법원장님의 리더십 상실이라는 최악의 위기상황 초래**
- 향후 입법 추진 일정에 비추어, **입법 추동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BH 설득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

☑ 입법 추진 현황

- ▶ 2014. 12. 19. 법원조직법 등 6개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168명 공동 발의)
- ▶ 2015. 2. 5.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법률안 상정
- ▶ 2015. 3. 2. 법사위원장·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 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실시

☑ 향후 로드맵

- ▶ 2015. 4. 10.경 법사위 공청회 개최
- ▶ 2015. 4월 임시국회 법사위 소위 심사
- ▶ 2015. 6월 임시국회 법사위 소위·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

※ 하반기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예산심사, 여야 총선 대비 정국 돌입으로 법안 심사 사실상 불가능 ⇨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의안 자동 폐기

- 입법 추진 로드맵에 조응하여, 실효적인 **對BH 접촉 루트 및 설득전략 수립** ⇨ 국회 법사위 본격 논의 돌입에 앞서 실행 착수



2. 입법 추진 관련 BH 현황

▣ 전반적으로 견제·반대 분위기

- 전임 비서실장 영향에 따른 부정적 분위기 고착되어 있는 상황
- VIP 핵심 보좌진의 親검찰 구성에 큰 변화 없음

▣ 사법부의 공식적 BH 접촉창구는 민정수석실 ⇨ 6월 임시국회까지 적극적 협조 획득 사실상 불가능

- [원인①] 민정수석의 검사 경험과 법원이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이라는 고정관념 토대로 反법원 정서와 깊은 사법불신 형성
- [원인②]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달 +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시도

3. 민정수석의 영향력 약화를 위한 입체적 대응전략 구사 필요성

⇨ [발상의 전환] 우회(Bypass) 전략

▣ 기본방향

- 민정수석 설득 정면 돌파는 불가능 ⇨ 우회하는 전략에 의한 유리한 입법환경 구축
- 입법환경에 대한 현실인식을 토대로 한 對BH 점점 다각화 필요
 - 민정수석 외 지근거리의 비중 있는 인사 설득 ⇨ ①BH 내 조기 공론화, ②상고법원안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로 전환, ③민정수석의 반대 명분 희석

▣ [접촉 다각화 방안 ①] VIP 비서실장 설득

- VIP의 절대 신임 ⇨ 설득 성공 시, 효과 지대
- 비법률가로서 법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無 ⇨ 긍정적 이미지 형성 노력 필요

▣ [접촉 다각화 방안 ②] 특보들 활용 방안 ⇨ 개인별 맞춤형 접촉·적극적 설득 노력



● 특보단 회의 ⇨ **VIP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

☑ 특보단 회의

- ▶ 2주마다 개최 예정
- ▶ 비서실장 참석, 정책조정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수석들 불참
- ▶ **주요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한 해결책 논의**
- ▶ 3. 24. 첫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청년실업 문제 등 다룸

- 특보단장 격인 **민정특보(이명재) 접촉·설득**

- 민정수석에 영향력 행사 가능
- 검찰중심적 사고 X, 국가원로로서 품격과 봉사정신 투철
- 개인적 욕심 없는 합리적 인물 ⇨ 설득 가능

- **정무특보(주호영, 윤상현) 접촉·설득**

- VIP가 강한 신뢰관계 표시
- 정무특보 2인을 설득 지렛대로 활용

● 상고법원안의 **특보단 회의 상정**을 통한 **VIP 긍정적 인식 형성** 시도

- 사법부 최대현안이자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 ⇨ ∴ 특보단 회의 안건으로 상정 가능
- 이명재 특보의 지지발언과 정무특보들의 지원사격 시 VIP 긍정적 인식 전환 가능

● **특보단 회의에서의 공론화**

-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 강조 + 상고법관 임명 과정에 대한 대안 제시**되도록 함
- **법원이 위 대안을 수용**하는 모습이 이상적

▣ **전제 조건**

- 비서실장, 민정특보, 정무특보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사전 접촉 방안 수립**
- 논리적 설득보다 **직관에 의한 이해도 제고 방안** 수립



4. 구체적 접촉·설득 방안

▣ 대상자별 성향과 관심사, 정치적 입장, 특보단 회의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접촉·설득 방안 수립

▣ 이병기 비서실장

● [인적사항] 19○○년생, ○○고, ○○대 외교학과, 주일대사, 국정원장

● [성향]

- ①전임 비서실장에 비해,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성격 + 유연한 업무 스타일
- ②권위적이지 않고 경청하는 스타일
- ③아이디어가 많은 스타일 ⇨ 새로운 제도 등에 열린 마인드
 - 한나라당의 ‘천막당사’ 아이디어, 노태우 대통령 서류 가방 직접 들고 청와대 출근하는 장면 연출 등

☑ 국정원장 시절

- ▶ 국정원 상대로 맹공을 퍼붓는 김광진 의원(1981년생)의 말도 항상 경청하여 김광진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좋아했다고 함
- ▶ 국정원 구내식당 이용시 직접 식대를 계산하여 직원들이 당황해했을 정도로 소탈한 모습 보임

☑ 비서실장 취임 후

- ▶ 비서실 내 소통 크게 강화
- ▶ 수석들의 VIP 직접 대면보고 활성화됨

● [HOW]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시급성 등 강조

- 사건 폭증으로 인한 분쟁종결 장기화 등이 국민들의 피해 및 전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 강변 ⇨ 참신한 해결방안으로서의 상고법원안의 장점 부각
- 상고법관 임명에 대한 VIP 권한 약화 염려에 대한 해명 ⇨ 대안에 대한 적극 수용 의사 피력
- 주요 관심사항 관련 원론적 차원에서의 법원의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



피력

최대 관심사 ⇨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

- ▶ 주일대사 경력의 비둘기파로서 최근 한일관계 악화 안타까워함
- ▶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외교적 해결 노력 중 ⇨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대하여 4. 15.까지 결정 보류 요청
-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대법원 20013다61381, 2013다67587)에 대하여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 ▶ 주일대사 당시 삼계탕 1500봉지를 들고 후쿠시마 원전피해자 방문하여 피해자들의 냉담한 반응을 녹인 일화로 한일 양국에서 큰 호평받은 것에 자부심

이○○ 전 중수부장에 대한 불만

- ▶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국정원이 언론공작을 하였다'는 폭로에 강한 불만 표시 ⇨ 화제에 오를 경우, '법률가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동감 표시할 수도 있음

원세훈 사건

- ▶ 적어도 전원합의체의 판단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 [WHO] 처장님

- 지위 및 위상 등 고려할 때, 처장님 직접 접촉 필요
- 여당 중진 의원들을 거점으로 접촉하는 방안도 추진 가능
 - 법무부 의견보다는 여당 중진들의 의견 중시할 것으로 예상
 - 과거 이회창 후보 캠프에서 유승민 의원 등과 친분 두터움

■ 이명재 민정특보

- [인적 사항] 19○○년생, ○○고, ○○대 법학과, 연수원 1기, 검찰총장
- [성향]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 전형적인 경청형 인물
- [HOW] 국가 원로 입장에서 상고법원 지지 부탁
 - 상고허가제가 어려운 우리나라 환경에서, 상고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임을 이해시킴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노력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 부각



- 대법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시키는 것이 관건

- [WHO] 처장님

- 지위, 연수원 기수 등 고려할 때 처장님 직접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

- **주호영 정무특보**

- [인적 사항] 19○○년생, ○○고, ○○대 법학과, 연수원 14기, 대구 지법 부장판사,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 [신상 등 관련 최근의 이슈]

- ☑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

- ▶ 정치적으로 민감한 안건을 합리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
 - ▶ 국가의 장래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높이 평가해줄 필요

- ☑ **대구 수성갑 공천 관련**

- ▶ 자신의 지역구인 수성읍과 인접한 수성갑에서 이한구 의원 불출마 선언
 - ▶ 수성갑에 야당 김부겸 전 의원 출마 유력
 - 현 정권 중간평가인 내년 총선에서 전국적인 상징성이 있는 수성갑의 승리를 위해 적임 후보자 물색에 고민 중

- [HOW] 상고법원에 대한 적극 우호 세력으로 포섭

- 법원에 대한 이해 깊으므로, 상고법원안의 개요, 기대효과 등을 쉽게 납득할 것으로 예상
- 비판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까지 상세하게 설명 ⇨ 특보단 회의에서 Key man 역할 수행 기대

- [WHO] 처장님, 기초실장, 도서관장

- **윤상현 정무특보**

- [인적 사항] 19○○년생, ○○○고, ○○대 경제학과,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사무총장

- [신상 등 관련 최근의 이슈]

- ☑ **정무특보 임명 관련 논란**

- ▶ 정무특보 자리를 위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부탁하는 등 지대한 공 들임



- 유승민 원내 대표가 정무특보단 구성에 강한 불만 표시
- ▶ 정무특보 임명 직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찬 ⇨ 기자들 사이에서 '오버한다'는 평가

☑ VIP와 매우 친밀

- ▶ VIP에게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몇 안되는 인물이라는 소문이 돌 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평

☑ 최근 근황

- ▶ 2014. 10. 원내 수석부대표 경험을 담은 '일요일의 남자' 출간
- ▶ 의원들 사이에서 '사람이 변했다'는 평이 돌고 있음

● **[HOW] 수용가능한 대안 제시 등으로 역할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

- 정무특보 임명에 자부심을 느끼고 VIP 앞에서 무언가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상황**
- 자기 과시욕 강하므로, '사법부 최대 현안에 대한 정무특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거듭 부탁할 경우 자기 과시 차원에서 적극 나설 가능성 있음
- 원안보다 VIP의 **상고법관 임명권 강화**할 수 있는 대안 가능하다고 설득
- 국정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 협조 의지, 금융·노동·특허 분야를 포함하여 경제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사법인프라 혁신** 등을 매개로 접근

● **[WHO] 기초실장**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2015. 7.

기획조생실

I. 검토 배경

-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은 VIP의 몫 ⇨ **BH의 입법 협조 획득이 절대적**
 - 현 정국의 무게중심 BH로 완전 쏠려 있는 상황
 -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 사퇴 등 최근 정치 현안에서 BH 압승
 - ❖ 여당, 법무부·검찰 모두 중요 국가 정책에서 BH의 눈치 보며 주도적으로 자기 목소리 내지 못하고 있음
 - 상고법원안에 대한 법사위 여당 의원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어 내기 위해서는 BH의 영향력 발휘 절실
 - ❖ 특히, BH의 입김은 법무부·검찰 및 그 종속 변수인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을 움직이는 직접적·결정적 동인이 될 것
- 하지만 BH 내 **견제·반대 분위기에 큰 변화 없음**
 - 전임 김기춘 비서실장 영향에 따른 부정적 분위기 고착되어 있고, VIP 핵심 보좌진의 親검찰 구성의 틀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
 - BH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설득 방안 검토하고 있으나, 상고법원 및 사법부에 대한 기존의 인식 전환, 우려 불식에 성공하기 전에는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하반기 정기국회 입법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BH 설득 모멘텀을 확보해야 할 시점** ⇨ BH 설득의 **최종 골든 타임 임박**



- ①7월 임시국회까지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에서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논의 불발, ②8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 심사 일정 확보 불투명 ⇨ 9월 이후 국회를 타깃으로 삼아야 함

☑ 9월 이후 국회 예상 일정

▶ [전체 일정] ①정기회: 9/1 ~ 12/9 (국회법 제4조, 5조의2 제2항 2호에 의해 9/1부터 100일간) ②임시회: 12/10 ~ 12/31

▶ [국정감사] 9. 4. ~ 9. 23.

▶ [법률안 심사]

- 국정감사 종료 후 정기회 종료시까지 1개월 남짓 + 12월 임시회에서 실시 예상
- 2015년 법률안 예상 일정 ⇨ ①[1차] 10월 초중순 ~ 11월 중순(11월 중순 이후는 예산심의에 관심 집중), ②[2차] 12/10 이후 연말까지 임시회 회기
- 총 3~4회 법사위 1소위 개의 예상

☞ 상고법원 법률안 [1차] 법률안 심사 시기에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9월 정기국회 개의 이전에, BH 설득 완료하여 우호적 입법 환경 조성하고 그 긍정적 분위기가 법사위까지 전이되도록 해야 함
- BH 내 부정적 인식 및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타개책 필요 ⇨ 적극 협상·설득 카드 제시
- 정부와 사법부의 협력 관계 노정의 과거와 미래상 제시 ⇨ 국가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공고한 유대관계 구축의 필요성 강조
 - ❖ ①정부 운영에 사법부가 기여해 온 구체적 판결례 언급, ②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지원과 협조 약속, ③사법운영에 대한 우려 해소
- 상고법원에 대한 BH의 긍정적 인식 형성 도모
 - ❖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상고제도 개선의 절박성 어필
 - ❖ 현재의 상고법원안에 대한 BH의 오해 해소 및 최대 관심 포인트 포착 ⇨ BH 설득이 가능한 수정안 제시
- 아울러, BH 최대 역점과제인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청사진 제안



- ⇨ ① 사법부의 진정성에 대한 공감, ② 상고법원 수정안 및 新정책에 대한 호감과 관심 유발을 전기로, BH를 상고법원 도입의 우군 세력으로 포섭할 수 있는 전략 모색

II. BH 현황 분석

1. 대외 현황

- **집권 1~2년차** ⇨ 가시적인 성과업적을 거의 도출하지 못하였음
 - 집권 1년차의 인사 난맥상, 집권 2년차의 세월호 사고, 비선 실세 논란 등 ⇨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
- **집권 3년차** ⇨ 불안감·절박감 속에 가시적 성과를 쌓기 위한 **'골든 타임' 선언**
 - 올해는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에 해당함
 - ❖ 전국 단위 선거가 없음 ⇨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총선과 대선으로 인한 정치 이슈에 매몰될 수밖에 없음
 - ❖ 내년부터는 집권 4년차로서 레임덕 시작 ⇨ 올해 초 비선 실세 논란 등으로 인하여 조기 레임덕 가능성마저 제기된 바 있음
 - 뚜렷한 **'집권 3년차 아젠다'** 발굴·제시하기 위해 고심의 노력 ⇨ 조기 레임덕 방지를 위한 司正 아이템 채택
 - ❖ 3월경 이완구 전 총리를 앞세워 **'부정부패와 전면전'** 선언하며 제1차 사정 정국 조성 ⇨ But, 성완중 전 의원의 자살로 역풍 직면, 오히려 이완구 전 총리가 국무총리직에서 낙마하고 불구속 기소됨
 - ❖ 후임 국무총리로 황교안 법무부장관 임명하며, 사정 2라운드 착수 분위기 조성
 - 👉 ① 유사 이래 최초로 **현직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임명**, ② 행정부 2인자



로 공안통 검사 출신 기용 ⇨ 강력한 사정·공안 드라이브 메시지 표방

■ 두 가지 화두 ⇨ ‘경제’와 ‘통일’

● [경제] ⇨ 각종 정치 이슈를 잠재우고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 준비를 위한 목적

❖ 이른바 ‘경제위기론’ ⇨ 개헌론 등 소모적인 정쟁 요소를 압살하는 한편, 레임덕의 시작 시기를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전통적 방법

❖ 또한 역대 정권의 성패는 임기 말의 각종 경제지표에 따라 평가됨되었고, 정권 재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

❖ 국가경쟁력 향상 및 경제 발전 이룩하기 위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표방

👤 특히 최근 들어, 여권 내 당정청 ‘삼각편대’ 총동원해 노동 개혁 드라이브에 올인하는 분위기 ⇨ 여당 내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구성하여 ‘액션플랜’ 구체화에 착수, 가동 멈춘 노사정위원회 부활 추진

👤 여권 내에서는 2015년 전반기 슬로건이 “공무원연금 개혁” 이라면, 하반기는 “노동 개혁” 이라고 주장

☑ VIP, 7. 21. 국무회의 발언

“노동 개혁은 경제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 [통일] ⇨ 총선·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 목적

❖ 內治에서의 실책을, 다소 추상적이고 이벤트 성격이 강한 外治, 특히 통일 분야에서 만회하려는 목적

❖ 특히 ‘통일대박론’ 이라는 프레임 선점은 진보층 공략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오히려 북한 지도층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어 긴장감 조성을 통한 보수층 결집에도 상당히 유효한 다목적 카드임

2. BH·여권 내부 현황

■ BH의 압도적 주도권 확보



- 여야 합의 산물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VIP의 거부권 행사**,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등 **강공 전략 구사**
- 김무성·유승민 투톱 체제 출범 후, BH 영향력 벗어난 여당의 독자 행보에 대한 위기의식 발로
- VIP 집권 하반기 성공적 정국 운영을 위해, 내홍 감수하고라도 여당에 대한 **친정 체제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
- 특히,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을 둘러싼 **역학 관계**에서 밀릴 수 없다는 **친박계의 현실적 셈법**도 막후에서 작용
- 결과적으로, **BH 의사 모두 관철됨** ⇨ 당분간 **VIP가 여권의 구심점**으로 **막강한 영향력 발휘** 예상

■ **당청 관계 복원 노력** ⇨ **포스트 유승민 정국 설계에 주력**

- 유승민 원내대표 사임 2일 만에, 장기 공석이던 **정무수석에 현기환 前 의원 임명** ⇨ 소통 단절 상태인 **당청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신호탄**

☑ **현기환 신임 정무수석**

- ▶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대회협력 본부장 등 지낸 노동계 출신 정치인
- ▶ **VIP의 복심을 읽을 줄 아는 측근** ⇨ 내년 총선에서 **여당 공천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
- ▶ 정통 친박계이지만, **비박계와도 두루 친분이 두텁다**는 평
- ▶ 김무성 대표와 '호형호제'하는 사이 ⇨ 김 대표에 대한 배려 내포

- 유승민 사태 국면에서 무난하게 중재력과 정치력 발휘한 **김무성 대표에 대한 신뢰 재확인** ⇨ 김무성 체제에 최대한 협조하며 하반기 정국 이끌어가겠다는 포석
- 합의추대 방식으로 **신임 원내대표에 원유철 의원, 정책위의장에 김정훈 의원 선출**

☑ **[인선 배경, 성향 등]**

- ① 원유철, 김정훈 의원 모두 **비박계**이지만, **계파색 없고 친박계와도 관계 무난**



- ② 원만한 성격에 당내 교분의 폭 넓어, 위기 수습용 인선으로 최적
- ③ 계파 초월한 **탕평 인사 외관 창출**하면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원내대표로 격상시켜 **정책 일관성도 달성**

❖ 다만, 신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BH가 원하는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

❖ 여당 내 실무급 인사에서는 친박계 쏠림 현상 발생

- 👤 ①원내수석부대표 ⇨ 친박계 핵심 조원진 의원, ②공천 책임지는 사무총장 ⇨ 친박계 황진하 의원

● 7. 16. **VIP와 여당 지도부간 청와대 회동**으로, 파열음 냈던 당청관계 복원에 착수 ⇨ 향후 당정청 회의 월 1회 정례화 추진

■ BH 내부에서는 **민정수석 등 강경파 득세**

● 당청관계 ‘**근본주의자**’들이 VIP 주변에서 **지근거리 보필**

❖ 여론 살피고, 대화·타협 중시하는 **온건파 입지 축소**

☑ 이병기 비서실장 소외론 대두

- ▶ ‘문고리 권력 3인방’ 포함, **강경파 수석들과 불화**
- ▶ 당청 긴장 국면에서 중재역할 제대로 못해, **VIP와 심리적 거리 멀어져**
- ▶ **홍보 및 민정 업무**는 이미 수석들에게 업무 포괄 위임한 상태
- ▶ 최근 지인들에게 “비서실장 자리를 그만두고 싶다”는 심정 토로한다는 소문

❖ 대신, VIP 심기만 살피고 충성 강조하는 **강경파들 활동 반경 확대**

☑ 우병우 민정수석의 입지 강화

-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2의 사정 정국 조성에 **막후 영향력 행사**
- ▶ 우 수석이 **비서실장보다 더 자주 VIP 독대**한다는 소문
- ▶ 다만, 법조 현안 관련하여 **이명재 민정특보와의 관계**에서는, 법조 경력이나 연령 등의 한계로 **일방적 주도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상황

3. 사법부에 대한 인식

■ **상고법원 도입에 대하여 심각한 오해와 우려**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요 원인] **최종심 법관에 대한 VIP의 임명권 침해 + 정부 배제한**



독단적 추진

- 대법관 전원을 VIP가 임명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역시 최종심 법관인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VIP의 인사권 행사 가능성에 주목
- 그러나 현재의 법률안에는 VIP에 대한 인사권 배려 없음 ⇨ 상고법원 도입을 최고법원 구성에 대한 VIP 관여에서 벗어나 사법부가 영향력 확대하려는 시도로 파악
- 독립된 법원을 설치하여 소송 심급 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중대 현안 관련하여, BH, 법무부와 사전 조율 없이 국회의원 설득을 통해 법률안 발의한 경과에 대해서도 반감 있음

■ 사법부가 국정 운영 추진에 걸림돌 된다는 인식 상존

- 기본적으로 사법권 독립 존중 의식보다, 정치적 시각에서 사법부가 BH 정국 운영에 협조적인지에 강한 관심
 - ❖ 전임 비서실장, 민정수석의 검찰중심적 사고, 反법원 정서가 상당한 영향 미침
- 정치적 쟁점 내포된 사건 등에서 여권에 불리한 재판으로 정국 운영에 큰 방해가 되고 있다는 불만 有
 - ❖ 예컨대, 원세훈 사건 항소심 판결, 자원외교 수사 관련 김○○ 前 금감원 부원장보, 정○○ 前 포스코 부회장 영장 기각 등
- 사법부에 대한 적절한 통제 필요하다는 인식 팽배
 - ❖ 사법부에 쉽게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상고법원 등 주요 현안을 매개로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강화 방안을 줄곧 모색

III. BH 설득의 구체적 방안

1.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 제시

가. 판결을 통한 과거 왜곡의 광정



▣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

- ①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

▣ 아래 ①과거사 정립, ②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 ② 미래지향적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 국가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왔음

▣ 아래 ③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4대 부문 개혁 중 ④노동, ⑤교육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 **①과거사 정립**

- 과거 정권에서의 이념·정파간 소모적 대립·논쟁의 결과,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옴 ⇨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

-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 보고서만 믿고 국가 배상을 결정해선 안 되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함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 ▶ 과거사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재차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음

☑ **대법원 2015. 4. 17. 선고 2014다234155 판결**

- ▶ 과거사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 ☞ 대통령 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함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님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 ⇨ 혼돈·경시되어온 국가관의 바른 정립 노력

- 이석기 전 의원 사건

- ☞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폭동과 내란을 선동한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죄로 중형을 선고**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선동한 행위를 **내란선동죄로 인정함**

-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

- ☞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를 이끌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체제 도전 행위에 제동을 걸**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 이 사건 빨치산 추모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이고, 피고인이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인솔하여 이 사건 전야제에 참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 등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③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 경제 관련 사건의 처리 ⇨ 단순한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면밀히 고려
- 한편, 침해한 갈등·대립의 존재로 말미암아 정당한 결론이라도 이를 도출하는 과정·절차가 소홀하면 또 다른 소모적인 논쟁을 초래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대법원은 공개변론 중계방송 등을 통하여 절차적으로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모색하였음

● 통상임금 사건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약 38조 원으로 추산됨)을 최대한 고려하여, 노사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제시함
- 특히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을 통하여 그러한 결론이 최소한의 혼란 속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임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 통상임금도 정기상여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도,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시킴

● 키코 사건

- 금융기관과 기업이 침해하게 대립한 사건에서 역시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을 실시하는 등 절차적인 노력을 통하여 양측이 승복할 수 있는 결론 도출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

- ▶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사건

- 철도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라 추진된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하여 이를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등 분쟁·갈등 상황을 종식시킴

☑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여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철도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함

■ ④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관련

-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은 노동 부문 ⇨ 노동 부문의 선진화와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노력

● KTX 승무원 사건

- ❖ 공공 부문 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쟁점이 관계된 사안에서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함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 KTX 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고, 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음

● 정리해고 사건

-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 약기 제조업체인 콜텍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봄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

● 철도노조 파업 사건

- ❖ 노사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하여 파업의 법적 기준을 정립함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 철도공사는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아 사측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파업을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철도노조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

■ ⑤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관련



- 교육 부문과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건이 다수 존재함 ⇨ 역시 **4대 부문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방향을 모색함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 ❖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 민주주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 ❖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과, 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1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통보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함

☑ 대법원 2015. 6. 3.자 2014무548호 결정

- ▶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놓음**

나. 정부 장관급 인사 추천 협력

▣ 현 정부 아래에서, 여러 고위 법관이 정부 장관급 인사로 임명

- ▶ 이○○ 前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국민권익위원장
- ▶ 황○○ 前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감사원장
- ▶ 최○○ 前 서울고법 부장판사 ⇨ 방송통신위원장
- ▶ 이○○ 現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국가인권위원장 내정

- 법관의 행정부 관료 진출에 대한 사법권 독립 저해, 삼권분립 원칙 침해 등 우려 섞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 유능한 법관들이 **VIP의 국정 운영에 참여**하여 역량 발휘하는 것도 전체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된다는 입장에서 **장관급 인선에 최대한 협조**



2. 상고법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도모

가. 상고법원 설득의 기본 방향 ⇨ **BH의 고착된 인식을 변경할 수 있는 특단의 전기 마련**

- 현재 BH 내부에서는 상고법원에 대한 일응의 정책 결정 완성
- BH가 **반대 입장에서 선회**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명분과 계기**가 제공되어야 함
 - ①BH 설득 노력과 동시에, 언론을 통한 여론戰으로 지속적 이슈화 추진 ⇨ BH 관심 사항으로 포착되게 하는 사전 정지 작업 필요
 - 법리 논쟁보다는 상고법원 도입의 장점과 기대효과,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다층화·다각화된 경로로 드러나도록 함
 - 상고법원에 대한 비판론과 이에 대한 대응 논리 개선 등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도 이슈화 확산에 일조할 수 있음
 - ②사법부의 진정한 힘은 판사들의 단단한 결속력에 있음 ⇨ 내부의 하나된 여론을 직간접적으로 외부에 표출하여 설득의 추동력으로 활용
 - ③상고법원 도입을 사법부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①국민의 사법복지 증진을 위한 개혁, ②국가의 발전된 미래상을 구축해 나가는 개혁으로 표방 ⇨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의 완성으로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의 승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부각

나. 상고법원 도입의 시급성 및 정당성 강조

1) 대법관의 업무 과부화 현실 제시

- 대법원 사건 접수, 처리 등 통계 자료



연도	접수	처리	대법관 1인당 접수건수 ¹⁾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	전원합의체	심리불속행
2002년	18,600건	18,717건	1,550건	1,559건	10건	46.2%
2010년	36,418건	35,168건	3,035건	2,931건	11건	68.8%
2011년	37,266건	35,922건	3,106건	2,994건	17건	69%
2012년	35,776건	36,233건	2,981건	3,019건	28건	55%
2013년	35,110건	35,115건	2,926건	2,926건	22건	54%
2014년	37,651건	38,141건	3,138건	3,178건		

-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여 년간 대법원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 약 18,000건에서 38,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2015년에는 4만 건 돌파 예상
- 2014년 기준 총 37,651건,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 연간 3,178건, 매월 265건, 주말 없이 하루 평균 8건 처리 要 (⇨ 대법원 전체 기준 미국 연간 75~80건, 영국 60~80건, 독일 900건)
- 심리불속행률은 10년 전과 유사, 전원합의체 사건은 10년 간 약 2배로 증가하는 등 사건의 중요성 및 난이도도 증가

▣ 여러 부작용 현실화되고 있음

- 50대 후반, 60대의 대법관들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과로에 시달리며 1년 내내 폭증하는 재판업무에 매진 ⇨ 매 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 부족
- 물리적 한계에 근접한 사건 폭증은, 궁극적으로 재판 당사자인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
- 100명 이상의 재판연구관이 대법원에서 대법관 보좌 ⇨ 전 심급에 걸친 효율적인 사법부 인적 자원 활용에도 한계
- 대법관 후보 기피 현상 심화 ⇨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국민적 요청

1)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 제외



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

☑ 2015. 7. 20.자 법률신문 “경륜갖춘 법조인, 대법관 후보 추천에는 ‘손사래’ ”
한 전직 대법관은 (중략) “**한갑 언저리의 나이에 버텨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관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변호사 특히 학계나 검찰에서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라며 “대법원이 연간 처리하는 수를 대폭 줄여야 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도 충실히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실무에 익숙한 법관들이 사건 처리를 맡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상고법원 설립 등을 통해 상고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대법관 다양화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2) 대법관 증원론의 문제점 지적

▣ 대법관 증원론 주장 세력의 의도 간파 필요

● [민변의 腹心] ⇨ 진보 인사 대법관 진출

- ❖ 대법관 증원으로, **진보 성향 인사의 최고법원 진출 교두보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

☑ 김○○ 변호사 (前 민변 회장,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주장
“기본적으로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입장에서 20명안을 제시한 것은 전혀 근거 없이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20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제안한 것이다. 우선, 한 개의 부를 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해서 6개의 부를 두게 되면 어느 정도 전문부를 구성할 수 있다. 민사부 2개, 형사부 2개, 행정부, **노동부** 등으로 전문부화 할 수 있고, **적어도 각 부 3명의 대법관 중 1명 이상은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용하게 되면 다양성도 갖출 수가 있다.” [사법개혁 리포트, 박영사(2008), 363면]

- ❖ 민변의 입장은 노무현 정부때부터 변함 없는 기조로 유지되고 있음
- ❖ 상고제도 개선이 공론화된 상황에서, 자칫 상고법원 도입이 좌초된다면, 진보 세력이 대법관 증원론을 강력한 대안으로 주장하며 최고법원 입성의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우려 매우 높음
- [대한변협의 의도] ⇨ 자기 밥그릇 지키기
 - ❖ 대한변협은 상고심의 기능 정상화를 위하여 대법원의 심판 범위를 제한하자는 각종 제안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여 왔음



- ❖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이 많을수록 변호사들의 경제적 이익은 커짐
⇒ 변호사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상고법원 반대 ⇒ 대법관 증원을 통하여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 수 증대 ⇒ 국민을 위한 상고심 제도 개선에는 관심 없고, 변호사들의 실리 확보에만 몰두

▣ 대법관 증원론은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음

- 대법관 증원은 심각한 수준의 상고사건 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함
- ❖ 수명의 대법관 증원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상고사건 접수 추세라면, 약간의 시간 경과 후 다시 제도 개선 목소리 대두될 것
- 미국, 영국 등 주요 사법선진국가에서 최고법원 구성을 One Bench 구성이 가능한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가늠이 볼 수 없음
- ❖ 15명 이상으로 최고법원을 구성할 경우, 충실한 토론과 평결을 통한 분쟁 해결 및 규범 형성 기능 수행 불가능
- ❖ 예컨대, 대법관이 170명에 이르는 러시아 대법원의 경우, 평의가 아닌 투표에 의해 판결한다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음

다. 상고법원안에 대한 우려 해소 ⇒ 상고법원 판사 임명 절차 재설계

1) 기본 전제

▣ ①BH의 기본적 인식에 동의하는 스탠스를 취함

- 헌법이 대법관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두고 있는 취지가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BH 내에서 득세

☑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공식 발언

“VIP에게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지명권**을 달라, 그러면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할 수 있다”

-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VIP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를 상고법원 판사에 대하여도 상당 부분 존중할 필요성에 동의함



-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3항의 해석상 CJ에게 임명권이 있는 현실과의 균형 점을 모색

■ ②BH 설득을 위한 특단의 카드 제시할 필요

- 입법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BH와의 협상 창구가 자주 마련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이고 과감한 양보 불가피함
- 내부적으로는 CJ의 인사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CJ가 파격적으로 인사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내세울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2) 기존의 사법부 내부 검토 방안

■ 개요

-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에 국회 및 대통령이 선출 및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시키는 방안 ⇨ 국회 2명, 대통령 1~2명, 사법부 현직 법관은 최소화

■ 한계

- ① BH 입장에서 반대할 가능성 높음
 - ❖ 9~10명의 추천위원 중 1~2명의 지명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
- ② 국회 몫의 추천위원이 포함될 경우 여야간 정치적 타협에 따라 후보자 나눠먹기 식의 추천이 이루어질 가능성
- ③ 국회에 대하여 대법관의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추천위 참여권을 인정하게 됨 ⇨ 대법관의 경우와 균형에도 맞지 아니함
 - ❖ 헌법은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에 대하여도 국회의 추천권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3) BH의 반감을 없앨 수 있는 새로운 임명절차 제시

- [개요] 당연직 3인 외 6인 ⇨ CJ와 대통령이 각 3인씩 지명



	대법관후보추천위	기존 검토안	새로운 제시안
다 연 직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선임대법관	상고법원장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비 당 연 직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대통령 지명 1명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추천 2명	
	학식, 덕망 있는 비변호사 3명	학식, 덕망 있는 비변호사 2명	학식, 덕망 있는 비변호사 3명
종합	행정 1명, 사법 3명, 재야 1명, 교수 2명 일반 3명	입법, 행정, 사법 각 2명 재야 1명, 일반 2명	행정 4명, 재야 1명, 사법 1명, 일반 3명
우 호 표	10명 중 6명으로 과반 확보 (사법 3+일반 3)	9명 중 4명으로 과반 미달 (사법 2+일반 2)	9명 중 4명으로 과반 미달 (사법 1+일반 3)

■ 1 CJ의 인사권 대폭 양보

- '(대법원장이 지명하지 아니한)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구성하는 추천위원회가 추천권 행사'한다는 것은 대외적 상징성과 설득력이 가장 큰 요소임

☑ 다른 고위공직자 후보추천위원회와의 비교 ⇨ 대법원이 파격적으로 양보한 것으로서 **진정성 있는 권한 양보**임을 부각시킬 필요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 9명의 위원 중 법무부 우호세력 5명(검찰측 인사 2 +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비변호사 일반위원 3)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 7명의 위원 중 국회 우호세력 4명(나머지 3명은 법조3륜 대표)

- CJ의 사심없는 인사권 양보'로 설득 가능성 높아질 것

■ 2 반면, 대통령의 관여 정도 획기적 강화 ⇨ BH 설득에 유리

- 대통령 지명 위원이 추천위 논의를 주도하게 되므로 **사실상 대통령에게 지명권을 부여한 것과 유사한** 효과 발생



- BH입장에서도 헌법상 CJ에게 임명권한이 있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핵심을 얻었다고 받아들일 것
- 피추천자들 중 실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도 BH와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중이 반영되도록 보장하겠다는 추가적인 전략적 스탠스도 가능

■ ③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의 실질적 인선 기능 발휘

- 상고법원 판사 임명 대상자를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로 한정 ⇨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닌, 임명대상자를 검증·선정하는 인사심의 기구
 - ❖ [유사 사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검 감찰부장 등
- 임명대상자 추천 배수는 2배수 또는 3배수로 설정

- ☑ 한편, 국회의 권한 보장 모색 ⇨ 약식청문회에 준하는 인사검증권한 부여
 - ▶ 가칭 '국회 인사검증위원회 심사제도' 도입
 - ▶ 법사위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원칙적 서면심사방식에 의한 인사검증 실시
 - ▶ 인사검증심사경과보고서에 사실상 기속력 인정

라. 상고법원안에 대한 우려 해소 ⇨ **중요 관심 사건은 대법원에서 처리**

■ 기본적으로 국가적·사회적 중요 정책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서 처리하게 됨

- 상고법원 제도는 상당수의 상고사건을 상고법원에 떠넘겨 대법원의 업무 적체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님 ⇨ 오히려,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 확립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규범형성 기능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 ❖ 정부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국가적·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은 대법관이 담당하는 사건 분류 절차를 통해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정해질 것
- 📢 올해 초 대법원규칙 개정하여 상고사건에서의 참고인 의견서 제출제도 (Amicus Curiae) 도입 ⇨ 정부가 사건 분류 단계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건을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정해 달라는 공식적 의견 개진 가능



❖ 그에 따라, 상고법원은 개인적 권리관계 확정에 적합한 사건만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운영

● 현재 법률안에도 여러 중요 사건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탄력적 확대 가능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 수렴하여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범위를 재조정할 수 있음

❖ 예컨대, ①공선법 위반 사건 전체, ②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체, ③형사 합의사건 전체, ④피고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는 행정사건 등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 가능

● 그 외에도, 정부와 여당에서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에 대한 의견 피력하면 이를 반영한 수정안 제시 가능

마. 상고법원안에 대한 오해 불식 ⇨ 입법 추진 절차 해명

■ 시기적 불가피성으로 인해 '의원입법' 형식 선택

● 종래 정부입법 과정에서 법무부의 처리 지연 또는 기피 현상 존재

❖ 대법원이 법률안을 법무부에 송부한 후 국회에 발의되기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이 소요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였음

☑ 정부입법 과정에서 정부가 처리지연하거나 기피한 사례

▶ 행정소송법 개정안

- 2011. 11. 법무부 산하 행정소송법 개정특별위원회 구성 ⇨ **대법원도 참여**
- 2013. 3. 법무부와 대법원 사이의 합의안 도출하여 입법예고
⇨ 정부(법무부)는 아직까지 **법률안 미제출**

▶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 절차조정법 제정안

- 2008. 11. 대법원 ⇨ 법무부에 법률제정안 송부
- 법무부 ⇨ 법률 내용 복잡하다는 이유로 검토 지연하다 결국 **법률안 미제출**

▶ 상업등기법

- 2002. 1. 대법원 ⇨ 법무부에 법률안 송부



- 2006. 3. 정부 ⇨ 국회에 법률안 제출 (약 4년 2개월 소요)

▶ **비송사건절차법**

- 2002. 1. 대법원 ⇨ 법무부에 법률안 송부

- 2006. 3. 정부 ⇨ 국회에 법률안 제출 (약 4년 2개월 소요)

▶ **사법보좌관법**

- 1999. 2. 대법원 ⇨ 법무부에 법률안 송부

- 2004. 9. 정부 ⇨ 국회에 법률안 제출 (약 5년 7개월 소요)

● **정부입법 과정에서 법무부 개입으로 내용 변경되는 사례도 존재**

☑ **법무부가 법률안의 핵심적 내용을 변경한 사례**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민법상 호주제가 2008. 1. 1.부터 폐지됨에 따라 호적법을 대체할 법률을 시급히 마련해야 했던 상황

- 대법원은 2005. 8. 2. 호적법을 대체할 법률로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법무부에 송부

- 법무부는 대법원이 제출한 **법률안의 핵심 내용을 변경**(사무관장기관을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변경)하여 2006. 3. 3.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

- 대법원은 어쩔 수 없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발의

- 국회 논의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사무관장기관을 대법원으로 함) 제시되어 2007. 4. 27. 국회 통과

- 법무부의 개입으로 인한 법률안 핵심 내용 변경 때문에 대법원이 법률안을 법무부에 송부한 시점(2005. 8. 2.)부터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2007. 4. 27.)되기까지 **약 1년 9개월 소요**

● **상고법원 도입의 시급성 막중하여 19대 국회 내 처리가 불가피하였고, 이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던 상황 ⇨ 신속한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

■ **대법원은 2014년 하반기부터 상고법원 법률안 준비 ⇨ 19대 국회 임기 만료(2016. 4.) 전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는 약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만 남아 있었던 상황**



-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정부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 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입장임

■ **상고법원 설치는 법원 업무와 직결되는 정책 ⇨ 법률안 발의 형식에 관한 사법부의 재량권 인정될 여지 충분**

- **특허법원,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무부 소관 업무(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와 관련성이 적은 법원조직이나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안 ⇨ 정부입법 대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으로 입법한 선례 존재

☑ **특허법원,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 과정**

- ▶ 1993. 11. 대법원 산하에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설치
- ▶ 1994. 2. 사법제도발전위원회 ⇨ 대법원에 특허법원, 행정법원 설치 건의
- ▶ 1994. 4. 대법원 ⇨ 국회에 특허법원,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 입법건의
- ▶ 1994. 7. 법사위원장 ⇨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특허법원,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제출
- ▶ 1994. 7.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위원회의 경우도, 소관 법률을 대부분 정부 제출이 아닌 상임위 제출이나 의원 발의 형식으로 처리
- ❖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은 총 59회 제출되었으나, **정부 제출은 단 2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법사위원장 제출이나 의원 발의 형식임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소관 법률인 **공직선거법** 등을 법무부 또는 정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회에 제출하여 처리(위원장 발의)하고 있음

3. BH의 중점 추진 정책 아이템 제시

가. 기본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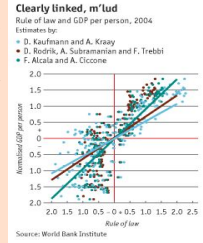
- BH가 주도하여 **정권의 성과업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상고법원안을 포함시켜 함께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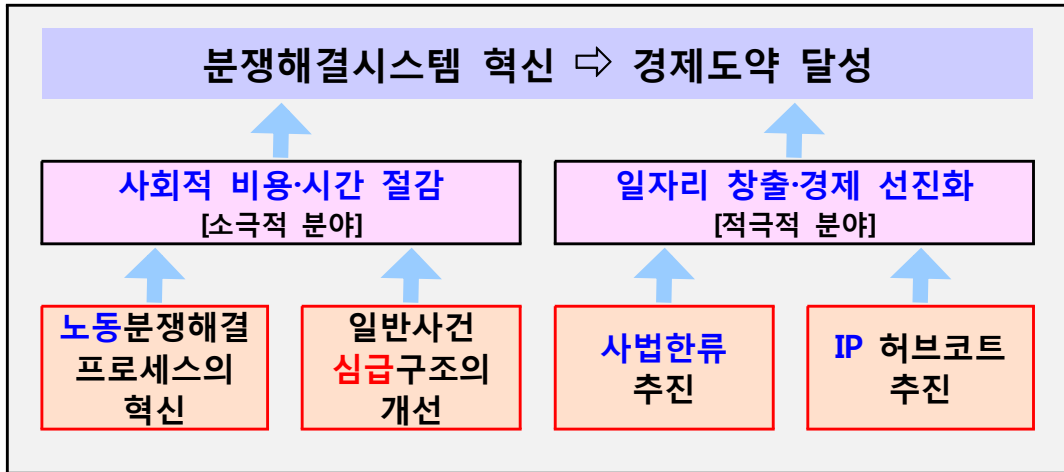
-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물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여 제공
- ▣ **BH의 관심을 유도할만한 내용**이면서 **사법부에 우호적인 내용**으로 구성
- 관심 유도 ⇨ 최대 현안인 **경제 관련 아이템이 적당함**

☑ **경제와 사법의 관계**

- ▶ 한 국가의 법치주의 실현과 GDP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있음 ⇨ **이코노미스트誌**에 실린 우측 그래프는 이를 나타내는 것임
- ▶ 2007년도 KDI 보고서 ⇨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순위의 법질서**만 확보되어도 **GDP가 1% 추가 성장한다**'라는 분석
- ▶ 세계은행 발간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 분쟁 해결[Enforcing Contract] 부문이 주요 평가 요소 중 하나[대한민국 사법부 3년 연속 2위 차지]



나. 정책 타이틀 ⇨ 가칭 **‘경제도약과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분쟁해결시스템 혁신’**



- ▣ **‘경제도약’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그 선결 과제이자 우리나라의 고질적 폐해인 **‘사회갈등해소’**를 2차 아젠다로 제시
- ▣ **‘반성적’인 ‘개혁(reformation)’이 아닌 ‘창조적’인 ‘혁신(innovation)’**으로 네이밍
- ‘혁신’은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사용된 워딩이기도 함

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사법한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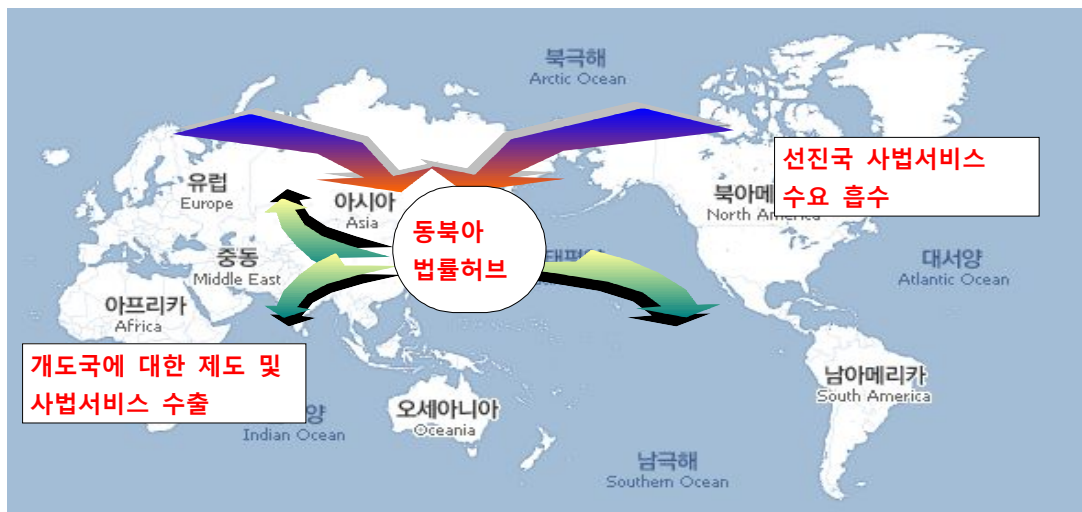


1) 추진 배경

■ **경제도약 및 국가경쟁력을 창출하는 사법한류 사업 추진**

- 사법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획득 ⇨ 국가 新성장모델로 설계
- 사법한류 확산에 의한 국가 신인도 상승과 Country risk 하락 효과도모 ⇨ 보다 유리한 조건의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교류 확대 기반 조성

■ **추진 기본 방향 ⇨ 인바운드 · 아웃바운드 양방향 전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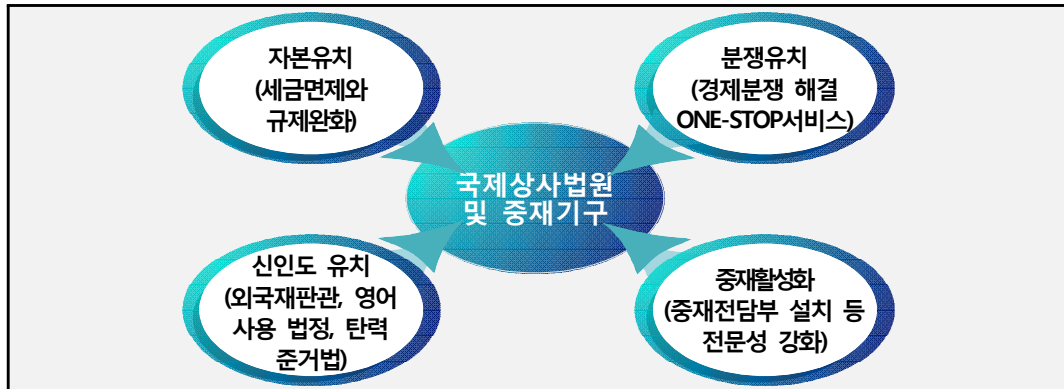
- 인바운드 [외국 ➡ 한국] 국제상사법원 및 국제중재기구 설치 ⇨ 국제 분쟁해결지로서 위치 선점
 -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막대한 부의 유출 [국내 법률시장 3조 원 vs 국내기업 해외지급 법률비용 10조 원] ⇨ 선진화 · 국제화를 통한 타개책 필요
- 아웃바운드 [한국 ➡ 외국] 개도국에 대한민국의 법제도 수출 ⇨ 법치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선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이미지 제고

■ **[장기적 목표] 동북아 법률수도로 자리매김**

- 아시아 경제권의 활성화에 따른 아시아지역 법률수요 증가 ⇨ 영국·미국과 같은 확고한 선도 국가 없는 혼돈의 동북아 법률시장에서 맹주 지위 획득



2) 국제상사법원 및 국제중재기구 신설



■ 국제자유경제구역 내 국제상사법원 신설

- 인천 송도 또는 제주도를 국제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
- ❖ [인천 송도] 자유경제지구와 연계 + 분쟁당사자들의 접근성 극대화
- ❖ [제주도] 일본, 중국의 지리적 근접성, 아시아 법률수요 고려

☑ 제주도의 對중국 입지 우월성

- ▶ 자본주의를 접한 중국 부호, 사업가들의 제주도 내 투자 급속히 증가
- ▶ 중국 최고경영자들의 경영전략회의, 제2의 생활근거지, 휴식처로서의 선호도 상승
 - 제주도의 우수한 사회·교육·문화·환경인프라에 매료
 - 특히, “공안경찰이 없는 제주도에서의 자유로운 行路 개방”에 매우 만족
- ※ 제주도의 **안전(Safety)·자유(Freedom)·정의(Justice)**를 보다 세련되게 상품화하여 중국에 판매 ⇨ 중국의 막대한 경제력 유인

- ❖ 국제자유경제구역 내 법률시장 완전 개방 ⇨ 세금 면제, 규제 완화
- 자유경제구역 내 국제화·특화된 경제 전문법원 설립
- 외국 재판관을 법관으로 임명
- 국제상사분쟁해결의 신속·적정한 처리에 적합한 전문재판부 구성
 - ❖ 상사부(Commercial Division), 파산부(Bankruptcy Division), 중재전담부(Arbitration Division), 해사부(Admiralty Division) 등
- 국제분쟁해결기구에 걸맞는 재판운영
 - ❖ 공식 언어로 영어 사용, 외국 변호사 소송대리 허용

■ 국제자유경제구역 내 국제중재기구 신설

- [필요성] 국제중재사건 유치에 따른 경제적 수익창출 효과 至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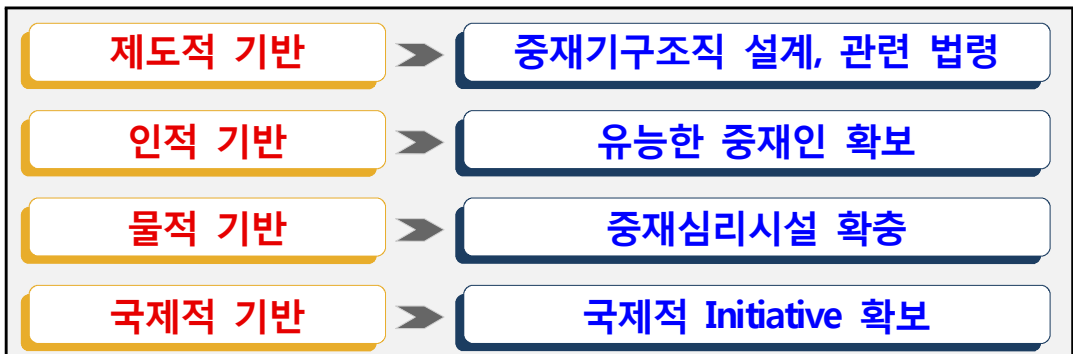


☑ 국제중재 활성화의 경제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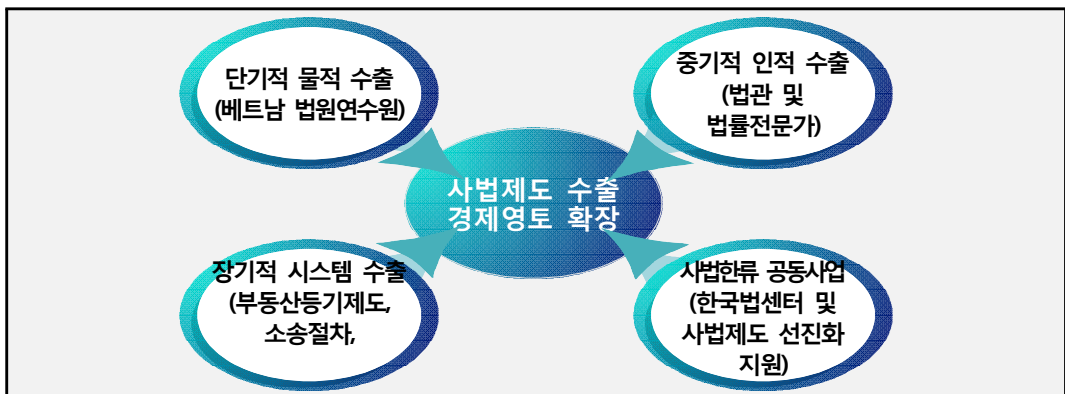
- ▶ 중재사건 1건 유치 ⇨ **25억 원**의 경제가치
- 향후 5년간 매년 50건씩 유치 ⇨ **6,250억원** 수익
- ▶ 2013년 한국기업 국제중재분쟁금액 약 20조원
- 중견급 이상 기업, 해외거래 분쟁의 **90% 이상** 국제중재로 해결

중재 1건당 경제효과	단위: 원
심리기간	평균 1주일 이내
센터 이용료	1억6000만~2억
중재인 보수	1억8000만~2억4000만(3인 기준)
중재대리인(변호인) 보수	16억~20억
당사자(관계자) 지출(숙박 등)	2억4000만~3억
합계	25억
*추정치	자료: 서울국제중재센터

- 정부 주도의 법원연계형 국제중재센터 설립
- 국제중재센터와 중재전담재판부 연계
- ❖ 소송과 중재의 결합 ⇨ 집행까지 신속·공정한 **one-stop 사법서비스** 제공
- 인적·물적 기반 확충
- ❖ [인적 기반] 전문성 갖춘 유능한 중재인 확보
- ❖ [물적 기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중재심리시설 구비
- 향후 5년 이내에 **아태 지역 국제중재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제중재 활성화 플랜 수립



3) 사법제도 수출





▣ [필요성] 세계 최고수준의 선진 사법제도 보유 ⇨ **개도국에 사법제도 수출**

- 상품과 건물의 수출에서 시스템과 제도의 수출로 패러다임 전환
- 법치주의 및 법제도 수출을 통해서 **법률영토 확장**
- 국내 기업 해외진출의 기반 조성 ⇨ 법의 지배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 [대상] ①아시아 개발도상국, ②남미 개발도상국, ③동유럽 기타 체제전환국

▣ 정부 주도 사법한류 공동사업 추진

- BH 주도 아래 사법부, 법무부, 법제처, 외교부(코이카) 등 유관기관 참여하여 공동사업 추진 ⇨ 다수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 도모

▣ 국제기구 등에서의 법제도 지원 프로그램 활용

- UN 등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지원 프로그램과 접목 ⇨ 사업재원 확보에 유리

▣ 장기적·종합적 시스템 이식

-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갖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
- 전자소송, 부동산등기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 출입국관리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법제도와 시스템 전수

4) 향후 추진 계획

▣ 사법부 내 기초 연구작업 착수

- 외국 성공사례에 대한 심층 벤치마킹
- 사법부 내부 연구반 또는 TFT 구성·활동
 - ▣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 사항, 인적·물적 기반 소요 등 파악

▣ BH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사법부, 법무부, 외교부 등 유관기관이 참



여하는 공동 추진체 구성

- 사업 추진의 동력 확보를 위해 BH가 사업의 전반적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는 전국가적 혁신 아젠다로 설정
- 구체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장단기 액션 플랜 수립

■ 사업 착수

- 사법한류에 대한 국내외 다각도의 홍보 실시
- 액션 플랜에 따른 단계적 실행 계획 실천
 - ❖ 과감한 세재혜택, 규제완화를 표방하는 국제자유경제지구 지정
 - ❖ 특화된 국제상사법원 등에 적용되는 회사법, 증권법, 노동법, 파산법 등 국제기준 법률 제정
 - ❖ 유능한 외국 재판관, 중재전담법관 등 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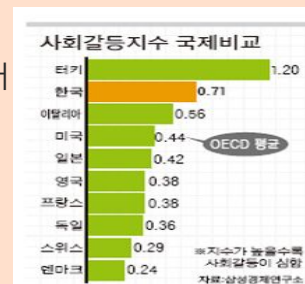
라. 노동 개혁의 기반이 되는 노동분쟁해결 프로세스의 혁신 ⇨ 노동분쟁 전문가참여제(참심제) 도입

■ 혁신 필요성

-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 노사갈등의 폐해 심각 ⇨ 막대한 사회적 손실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약의 발목을 잡는 주된 원인
- ❖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 선진국 진입 위해 극복해야 할 마지막 사회적 장애요소

☑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 (삼성경제연구소 2013년 연구결과)

- ▶ 한국의 갈등지수, 종교분쟁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2번째로 높음
- ▶ [원인] 지역간, 노사간, 이념간 갈등 관리 실패
- ▶ 갈등지수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개선 시
⇨ 1인당 GDP 최대 21% 증가



- 임금 피크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효율적 사후 분쟁



시스템 구축하여 노동 시장 전체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의 노동분쟁은 격렬한 대립양상으로 흘러 자주적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노사간 All or Nothing 논리로 맞섬
- 근로형태의 다각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고용에 있어서 양성평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관계에서 분쟁이슈 더욱 복잡·첩예·다양해질 것임
- 현재의 노동위원회나 일반 법원에서의 분쟁해결구조로는 대처하는데 한계
 - ❖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동위원회가 개별적 노사분쟁까지 처리하고 있으나, 사실상 5심제(지노위 + 중노위 + 3심 소송)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충실하지 않은 심리, 공익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그치지 않고 있음
 - ❖ 일반 법원의 노동사건 처리에 대하여도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 有
 - ⇒ 노동분쟁의 새로운 평화적 해결시스템 구축 긴요한 시점

■ 혁신 개요

- 개별적 노동분쟁의 화해적 종결을 위한 분쟁처리시스템 新구축 ⇒ 노동분쟁 전문가참여제(참심제) 도입
 - ❖ [담당 사건] 해고, 임금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건
 - ❖ [사건처리 주체] 노동심판위원회 ⇒ 직업법관 1명과 노사관계업무경험 풍부한 노동심판원 2명(사용자측 1명, 노동자측 1명)으로 노동심판위원회 구성
 - 👉 (1안)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국무총리 산하 독립된 분쟁처리위원회로 구성
⇒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의 개별적 근로관계분쟁에 대한 심판기능 흡수
 - 👉 (2안) 법원 내 설치 ⇒ 제도 도입 초기에는 노동위원회 판정 기능 유지하여, 노동분쟁 당사자들에게 절차 선택권 부여



❖ [신속한 분쟁해결] 1회 기일 조기 지정 + 원칙적으로 3회 기일 이내에 노동심판사건 종국 처리

❖ [사건처리 프로세스]

👤 일단 조정 시도 ⇨ 실패 시 심판 ⇨ 불복 시 소송으로 이행

👤 비송사건으로 분류하여, 법리적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분쟁 실상에 적합한 결론 제시

❖ [기대효과] 노동분쟁처리의 전문성·중립성 제고 + 자주적인 분쟁해결절차 마련 ⇨ 단순한 사건 종결을 넘어선 분쟁의 신속·근원적 해결 ⇨ 노사분쟁에 얽여 있는 유·무형의 사회갈등 해소 ⇨ 경제발전의 동력 확보

● 전문법원인 노동법원 설치하는 방안에 비해, 단기간 내 큰 비용 투입 없이 도입 가능

❖ 과거 사개위에서 추진한 노동법원 설치 방안에 대하여, 별도 법원 설립에 대한 부담, 노동위원회 존립과 직결되어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부정론 제기된 바 있음

■ 일본의 노동참심제 성공사례

- ☑ 2004년 내각 주도로 참심형 노동심판제도 도입 ⇨ 2006년 4월부터 시행
- ▶ 로스쿨 제도, 재판원 제도 등과 함께 사법제도개혁 일환으로 내각이 추진
- ▶ [개혁 배경]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로 도산기업 속출하면서 노동분쟁 급증하자, 내각 후생노동성, 사법부의 분쟁해결기능 한계 봉착 ⇨ 신속성·전문성 갖춘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구축 작업 착수
- ▶ [성과] 2006. 4.부터 2009. 9.까지 동경지재 노동심판사건 중 약 78%가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고 종국됨 (조정성립율은 71.8%)
- ▶ [평가] 기존의 노사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획기적 변혁이자, 일본 사법개혁 중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소개되고 있음

마. 세계특허(IP)허브법원 추진

■ 혁신 필요성

● 종래의 산업 발전 모델의 한계를 극복한, IP와 사법서비스 결합을



통한 국가 新성장 모델 제시

- ❖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4위 내에 드는 **특허 강국**의 장점 활용
- ❖ 창조경제의 기반인 **IT 기술**을 **핵심**으로 新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법인프라** 구축
- 일본의 폐쇄성, 중국의 후진성과 비교되는 **대한민국의 개방성, 우수성**을 바탕으로 **선도자**로서 **행보** 착수

■ 혁신 개요

- [단기적] 특허법원에 국제부를 설치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대외적 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역량 강화** ⇨ 글로벌 IP소송의 **선호** 법정으로 자리 잡음
- [중극적] 아시아 특허분쟁 해결기구 대한민국 설치

바. 일반사건 심급구조의 개선

■ 혁신 필요성

- 소송건수 및 상소율의 지속적 증가 ⇨ **재판기간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
- 상고사건 적체로 인해 **대법원의 제대로 된 법선언 및 분쟁해결기능** 수행에 **한계점** 임박 ⇨ **최고법원의 기능** 저하는 필연적으로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게 됨

■ 혁신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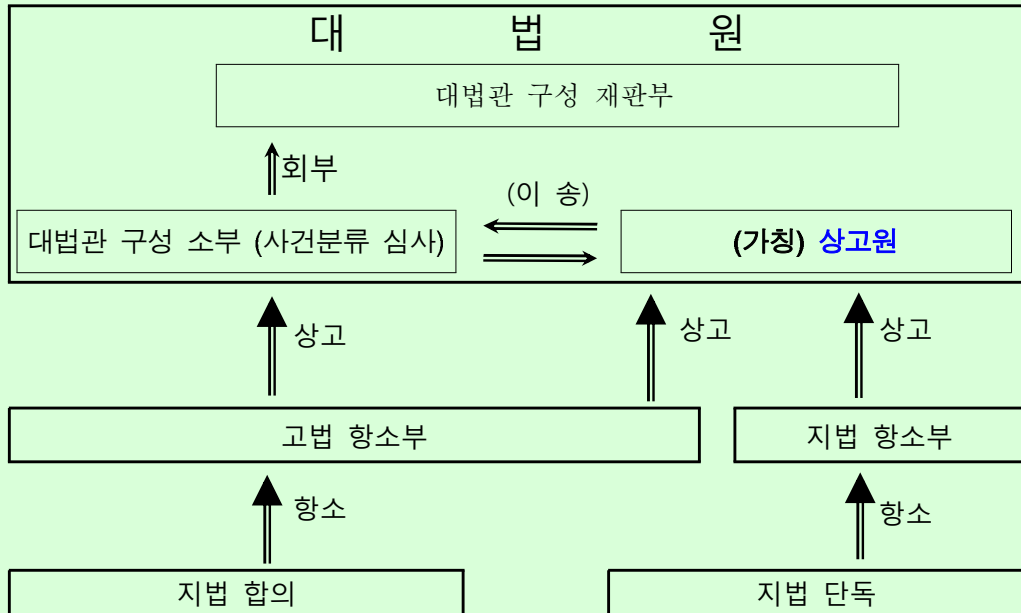
- ①사실심 충실화 ⇨ 상소율 하락 ⇨ 총 재판기간 단축
-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심층 검토
- ②상고제도의 개선

☑ [원안] 상고법원 설치

- ▶ 대법원의 정책법원化 + 상고법원에서의 개별적 권리구제 기능 강화
- ▶ 신속·충실한 상고사건 처리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대안] (가칭) 상고원 설치



- ▶ 대법원 재판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법원 조직의 일부로 '상고원'을 둠**
- ▶ 대법원 심판권을 **대법관으로 구성된 부와 상고법관으로 구성된 부가 분장함**
- ▶ 신속·충실하게 상고사건 처리할 수 있다는 **상고법원안의 장점 그대로 유효**
- ▶ 4심제 구도로 비쳐지는 **외양 피할 수 있고**, 대법원과 상고원 사이의 긴장·갈등 상황 발생 가능성도 낮음
- ▶ 현재 **대법원 조직의 일부를 상고원으로 재편하는 방식** 취함으로써, 상고법원안에 비해 추가 **예산·시설 소요 우려 높지 않음**

4. 향후 사법운영에 대한 우려 불식 및 국정 적극 협조 의사 표명

가. VIP가 갖는 우려의 원인 분석

- **VIP 핵심 보좌진의 反법원 정서 및 反법원 성향 보고·조언의 영향으로 인한 근거 없는 불신**
 - 2013년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反법원 정서를 가진 보좌진이 득세함
 - 그간의 여러 법원 판결 및 사법행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과장되어 보고되었을 가능성



- ‘사법기능의 특성으로 인한 본질적 독립성향’을 ‘사법부의 **독자적인 노선 및 독불장군식 운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
- **VIP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사법부에 대한 낯설음과 불안감**
 - VIP가 인식하고 기대하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사법권에 대한 불만 및 불편함
- ‘**배신 트라우마**’로 인하여 3권 분립의 한 축에 대하여도 쉽게 신뢰를 주지 아니하는 성향

☑ **VIP의 배신 트라우마에 관한 언급**

▶1991. 2. 10.자 친필 일기 中

“옛 사진을 정리하며 인생무상함을 또 한번 느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당시 내가 알고 있었던 그들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이 한결같은 경우가 그야말로 드물었다. **모두가 변하고 또 변하여, 그때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배신을 하고** 이러저러하게 변할 것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지금의 내 주변도 몇 년 후 어찌 변해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2007년 출간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中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만큼 슬프고 흉한 일도 없을 것이다. 유신 때는 ‘유신만이 살길’**이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때 무슨 힘이 있어 반대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하는 것을 보니 인생의 서글픔이 밀려왔다”

나. 우려의 합리적 불식

■ **[능동적 요소] 국정운영 및 사법행정의 지향점 같음**

- CJ 임기 하반기 사법부 운영 기본방향은 VIP의 임기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지향점이 동일할 수 밖에 없음
- ①**국정 철학 유사함**
 - 신중한 보수로서 안정적인 사회 발전을 지향하고, 청렴과 헌신을 강조하는 면 등 기본적인 국가관과 국정 철학 유사함
- ②**現 VIP 임명 대법관이 점차 대법원의 다수를 점하게 됨**
 - 현재 3명인 現 VIP 임명 대법관이 점점 증가하여 2017. 6.에는 7명으로



과반수가 됨

▣ [수동적 요소] 사법부 속성 및 차기 CJ 임명권

- ① 법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선출된 국가원수를 상대로 도발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필요나 의지가 없음
- ② 2017. 9. 차기 대법원장 임명권을 현 VIP가 행사함 ⇨ 일반론으로도 임기의 2/3를 마친 조직의 수장이 후임자 임명권자를 상대로 비협조적인 자세를 드러낼 이유는 전혀 없음
- ③ 상고법원 등 사법부 핵심 현안 추진을 위해 BH의 우호적 협조가 필수불가결함을 잘 인식하고 있음

다. 국정 적극협조

- 공공·노동·금융·소득 부분 4대 개혁 등 주요 국정 과제에 협조
- 단순한 소극적·암묵적 지지가 아니라 앞에서의 세부 아이템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적극적 참여 및 지원 활동을 기초로 한 국정 협조

IV. 구체적 설득 전략

▣ 사전 고려 사항

- ① 최근의 우호적 분위기 등 적극 활용
 - ▣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결과 ⇨ BH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
 - ▣ 특히,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원세훈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실체 판단 문제가 남아 있어, BH 관심 대상에서 완전 소진되지 않은 상태

▣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평가, 향후 예측 등

▶ [긍정적 평가] 형소법 제315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기준을 명시하는 등 형사법의 증거법리에 충실한 판결



▶ [부정적 평가] 선거 개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정치적 고려에 기한 회피성 판결, 일부 언론에서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규명

▶ [향후 심리 및 결과 예측]

- 원심은 심리전단의 인터넷, 트위터 활동 범위를 확정된 다음, 그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통계적 분석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진 시점과 당시 상황, 게시글의 내용 및 당시 상황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 범위를 판단

- 대법원 판결로 심리전단의 활동 인정범위가 달라진 범위 내에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종합적, 통계적인 상황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음 ⇨ ∴ 파기환송심에서의 검찰 및 변호인의 추가입증에 의해서 tweet 글의 인정범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가 결정될 것

- ▣ 향후 예정되어 있는 정치인 형사 사건에도 BH의 관심과 귀추 주목될 것
⇨ 사법부에 대한 강경 일변도 입장보다는 주요 현안 관련 점점 모색을 위한 유화적 태도 보일 가능성 충분

☑ 정치인에 대한 주요 형사사건 현황

- ▶ 한명숙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 ⇨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대법원 계속 중
- ▶ 박지원 의원 알선수재 사건 ⇨ 2심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상고 제기
- ▶ 조현룡 의원 뇌물 사건 ⇨ 1심 징역 5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
- ▶ 박상은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 ⇨ 1심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
- ▶ 송광호 의원 뇌물 사건 ⇨ 1심 징역 4년 선고, 항소기각

● ② 민정수석을 우회(Bypass)한 이병기 비서실장과 특보단 접촉·설득 전략의 궤도 수정 필요

- ▣ 성완중 전 의원 자살로 인한 제1차 사정 정국 위기, 강경 성향 보좌진에 둘러싸여 불통 이미지 강화된다는 주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에 대한 VIP의 전폭적 신뢰 지속되고 있는 상황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유승민 원내대표 불신임 등 민정수석의 강공 전략 조언이 결과적으로 성공

👤 이미 BH 내 권력구조의 중심축이 비서실장에서 민정수석으로 이동하였다는 평

👤 특히, 사법부 관련 정책에 대하여는 민정수석에게 힘을 실어줘, 사실



상 의사결정권한이 민정수석에게 이양된 상태

- ❖ 사법부 현안 관련 공식 창구이자, 실세 보좌진인 민정수석을 제쳐 둔 채 상고법원 관련 설득·타협 전략 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획기적인 설득 카드로 민정수석을 돌파하는 정공법 필요
- ❖ 여러 접촉 루트를 활용한 단계적 접촉·설득 기회 포착하여 상고법원에 대한 VIP의 이해와 협조 구해야 할 타이밍

■ [1단계] **이명재 민정특보와의 면담 추진**

- [인적 사항] 19○○년생, ○○고, ○○대 법학과, 연수원 1기, 검찰총장
- [성향 등]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 전형적인 경청형 인물, **법조 현안 관련 민정수석과 역할 분담**하고 있는 지위
- [HOW] 국가 원로 입장에서 상고법원 지지 부탁
 - ❖ 상고허가제가 어려운 우리나라 환경에서, 상고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임을 이해시킴
 -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노력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 부각
 - ❖ 대법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시키는 것이 관건
- [WHO] **처장님**
 - ❖ 지위, 연수원 기수 등 고려할 때 처장님 직접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

■ [2단계] **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위한 VIP 방문 일정 활용**

- [예상 일정] 8. 6.부터 8. 11.까지 사이, 오·만찬 병행 가능
 - ❖ 7월 말에는 VIP 휴가 예정
- **CJ**께서 **VIP와의 개별 면담 자리**에서, 먼저 ①**정부와 사법부의 우호적 관계 형성** 바람, 국정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 협조 의사를 등을 피력하시고, ②**‘경제도약과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분쟁해결시스템**



혁신'이 VIP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공공부문 개혁'의 추진체가 될 것 강조

- 아울러, 심급제도의 개선 등 사법부의 최대 당면 과제에 대한 협조 강력히 요청 ⇨ 정책 추진 실패는 사법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하여 중국에는 국가의 대외적 위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변
- 상고법원 도입의 절박함 주지시키고, 법률안 발의 형식에 대한 해명과 함께,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VIP 임명권 강화 방안 등 수정안 가능하다고 설득
- [최종 목표]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한 BH의 찬성 또는 적어도 중립 입장 견인 ⇨ 상고법원 입법 성사를 위한 막강한 우군 확보 또는 긍정적 분수령 마련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2015. 11.

법원행정처 차장

1. 검토 배경

▣ 19대 국회 법률안 통과를 위한 **최후의 법률안 심사 일정 도래**

- 19대 국회 12. 9. 정기국회 종료로 사실상 활동 종료 예상
- 11월 1달 동안 진행될 법사위 1소위 본격적 법안 심사의 장에서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모든 역량 집중 투입해야 할 상황
 - 11월 30일 1소위에서 본격적 법안 심사 예상

▣ 그러나 여전히 입법추진환경에 **부정적 외생 변수 상존**

- 특히,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 가진 BH, 법무부의 반대 기조에 변화 없음
 - 현 정국의 주도권은 여당에게 있고, 여당의 배후에서 BH가 막강한 영향력 행사하고 있음 ⇨ BH의 반대 극복 없이, 주요 법률안 처리나 정책 이슈화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한성 1소위원장도 BH와 법무부의 반대를 이유로 상고법원 법률안을 1소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 표명

☑ 이한성 의원의 중앙일보 임○○ 기자에 대한 발언 요지

상고법원 법률안을 1소위 안건으로도 상정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임○○ 기자의 질의에 대하여, “현재 상고법원 법률안은 BH와 법무부가 반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안건으로 상정해봐야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먼저 BH, 법무부와 협의가 있어야 1소위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 ▣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입법 성공을 견인할 수 있는 최후의 협상 전략 모색해야 할 시점**



- 반대 입장의 진앙지(震央地)인 BH 극복을 위한 효과적 협상전략 수립 검토

2. 협상추진 전략

가. BH 민정수석의 기본 성향과 상고법원에 대한 입장

■ 기본성향

-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선적이며 자기소신이 강함
- 청탁이 통하지 않는 강직한 성격 소유

■ BH 내 입지 등

- VIP의 핵심 참모로서 VIP 주변에서 지근거리 보필
- 인사검증, 검찰인사와 중요기획수사에 관한 한 VIP의 절대적 신임 획득
- 사법부 관련 업무 창구이자 주요 정책결정권자로서 역할 수행

■ 상고법원에 대한 입장

- VIP의 상고심법관 임명권 침해를 이유로 확고한 반대 입장 견지
- 검사 시절부터 형성된 사법부에 대한 견제 의식과 심정적 반감도
사법부 주요 정책인 상고법원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절대적 영향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상고법원 협상설득의 기본 방향 ⇨ **BH 민정수석의 고착된 인식을 변경할 수 있는 특단의 전기 마련**

1) 현재 BH 내부에서는 상고법원에 대한 일응의 정책 결정 완료

- 정책 관련성 가진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 구축
- 민정수석실 분위기가 법무부, 검찰로 유입 ⇨ 반대여론 확산의 중



심축으로 자리 잡은 상황

2) 민정수석의 기존 반대 입장을 반복시킬 합당한 명분과 계기 또는 실효적 압박카드가 없으면 부정적 입장 선회가 현실적 불가능

▣ [명분과 계기 ①] 법원-법무부간 합의 도출

- VIP가 8월 초 CJ와의 이○○ 대법관 임명제청을 위한 오찬 자리에서, 상고법원안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의 합의 도출 주문한 바 있음
- 이후, 몇 차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부진간 협상 추진하였으나, 법무부의 미온적 태도로 별다른 협상의 성과 거두지 못함
- ⇨ VIP 협상지시 전달 시 하달된 메시지 내용과 법무부의 그간의 협상태도에 비추어, 12월 초까지 법무부와의 합의 도출은 기대 불가능

▣ [명분과 계기 ②] 상고법원안의 문제점 극복 대안 제시

- BH 제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하여 설득
- ① 상고심제도 개선의 불가피성과 시급성
 - 상고심 현황 ⇨ 사건 폭증으로 물리적 한계 봉착

- ▶ 10여년 사이 상고사건 2배 증가: 18,600건(2002년) VS 37,651건(2014년)
 - 2015년 40,000건 돌파 예상
- ▶ 2014년 기준, 대법관 1인당 연간 3,178건, 업무일 기준 하루 평균 10건 처리
 - 1980년 기준, 대법관 1인당 연간 703건 처리

- 정당한 권리자 보호 지연 ⇨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
- 선진 국가 최고법원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사건부담 ⇨ 국가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문제
- VIP도 8월 초 CJ와의 면담 자리에서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 표명한 바 있고, 대다수 법사위원 및 언론도 더 이상 상고심제도 개선



을 미룰 수 없다는 점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음

● ② **헌법 개정 없이 VIP에게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 부여하는 것은 원시적 불가능**

- 그 대신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VIP 의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여 제시 ⇨ 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 1]

■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의 추천, 선정, 검증 과정에서, VIP와 정부, 여당 의견 충분히 반영 가능

- 제시한 대안이 현행 헌법의 틀 내에서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한 VIP의 영향력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

● ③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 설치 가능** ⇨ 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 2]

- 별도의 조직과 시설을 갖춘 독립된 상고심 법원 신설 방안만을 고집하는 게 아님을 명확히 설명

■ 상고법원 신설은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합리적 방안 중 하나 ⇨ 대법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차선택일 뿐, 사법부 조직과 기능 확대하려는 것 아님

- 대법원 내 설치할 경우, 예산·시설 소요 우려 높지 않고, 대법원 내 상고법원 판사부에 대한 대법원장의 컨트롤 충분히 가능

● ④ **VIP의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실제 검증하기 위한 한시법 제정**

- 향후 약 3년 가량 상고법원 판사 임명 과정에서의 VIP 영향력 발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일단 상고법원 법률안을 3년의 한시법안으로 제정

- 다만, 대외적으로는 한시법 제정 목적을 상고법원 도입 이후 국민들의 신속충실한 상고심 재판받을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표방

■ [압박 카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



-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옴 ⇨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자료 3]
 -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 그러나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 비록 원론적 차원의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방이라 하더라도, 단호한 어조와 분위기로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상고제도 개선 관련 민정수석이 취해 온 그간의 반대 행보, 이로 인해 제도 개선 좌절로 사법부 및 국민 전체가 입게 될 피해와 충격, 그리고 향후 사법부의 결연한 의지 등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법부의 입장을 계속 호소해 나갈 것임을 경고하여, 심리적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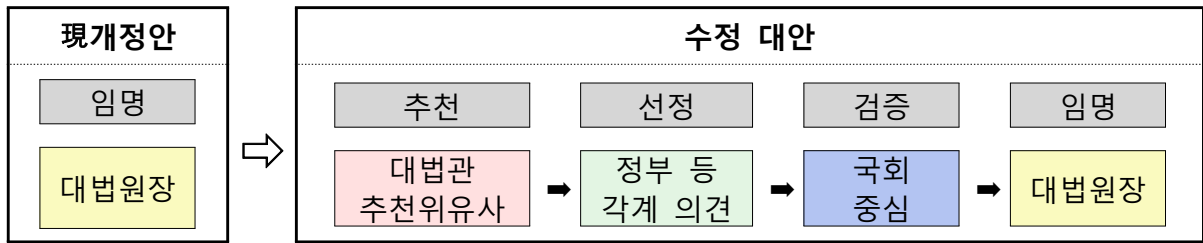


[별첨 자료 1]

상고법원 판사의 임명절차

▣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 방안 검토

- [개요] **VIP 등 국민 대표 의견 존중** + 민주적 정당성 보완



- [추천] 추천위원회

-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사회 각계 참여하는 추천위원회 구성 ⇨ 법무부장관 등 의견 반영하여 약 1.5배수 인사 추천

- [선정] 정부 등 의견 수렴하여 최종후보자 선정

-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최종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VIP, 정부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명시적으로 도입함

- [검증] 검증절차 도입 및 검증결과 존중

- 국회 법사위 추천 위원이 중심이 되는 ‘검증위원회’ 에서 최종후보자 인사검증 ⇨ **여당 의원들의 의견 반영 및 실질적 검증 가능**
- 대법원장이 검증결과를 존중하여 최종 임명

▣ 기타 인사 관련 개선 방안

- 대법원장 임명권 분산 ⇨ **임기 2, 3, 4년 차등제**(차기 대법원장이 다수 임명 가능)
- 법관 관료화 방지, 사실심 충실화 ⇨ 상고법원 이후 **사실심 복귀(1심 재판)**
- 상고심의 다양화, 전문성 강화 ⇨ **외부 법조경력자 임명**(변호사, 교수, 검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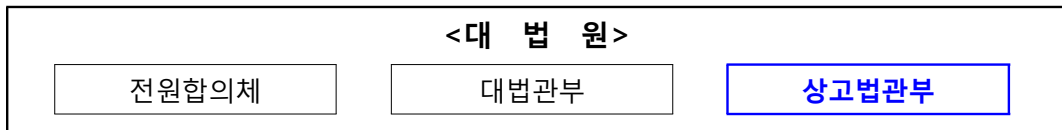
[별첨 자료 2]

상고법원 대법원 내 설치 방안

■ [기본 인식] 별도의 조직과 시설을 갖춘 독립된 상고심 법원 신설 방안만을 고집하는 것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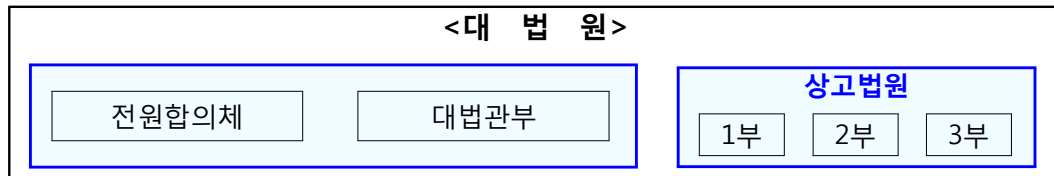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고제도 개선의 여러 합리적 방안 중 하나로 상고법원 신설을 제시한 것임
- 상고법원 도입은 대법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차선책일 뿐, 독립된 법원 설치로 사법부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이 절대 아님

■ [구체적 방안①] 대법원 내 별도 재판부로 설치



- 별도의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재판부로 구성
- 상고법원장, 사무국 등을 설치하지 않음

■ [구체적 방안②] 대법원 내 독립된 재판조직으로 설치



- 상고판사로만 이루어진 재판부를 묶어 별도 조직을 구성함
- [사례]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동경고등재판소 내 '특별지부1)'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소장, 재판관회의, 사무국을 두고 있음

■ 대법원 내 설치 방안의 기대 효과

- 현재 대법원의 조직 일부를 상고법관부로 재편하는 방식 ⇨ 추가 예산·시설 소요 발생 우려 높지 않음
- 대법관부에서 사건 심사 ⇨ 대법관 심판 사건 / 상고법원판사 심판 사건으로 분류
 - 사건심사에 관한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의견 제출권 인정 및 존중**
- 대법원 내 상고법관부에 대한 대법원장의 컨트롤 충분히 가능
- 4심제 논란 야기하는 특별상고도 폐지할 수 있음

1) '지부'는 지역적 관할을 달리하는 개념이나,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동경고등재판소와 관할을 같이 하고 담당하는 사건의 종류만 다르다는 의미에서 '특별지부'라고 함



[별첨 자료 3]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

▣ ① **과거사 정립**

●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 **보고서만 믿고 국가 배상을 결정해선 안된다고 판시**하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함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 과거사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재차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음**

☑ **대법원 2015. 4. 17. 선고 2014다234155 판결**

▶ 과거사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음**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1622, 2015. 1. 22. 선고 2012다304365 판결 (광주항쟁 손해배상청구 사건)**

▶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위자료를 포함한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함

●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 대통령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함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님**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

● 이석기 전 의원 사건

-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폭동과 내란을 선동한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죄로 중형을 선고**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선동한 행위를 **내란선동죄로 인정함**

● 전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지위 확인 사건

- 해산된 전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소각하 판결 선고**

☑ **서울행정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합50320 판결**

▶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근본적 가치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내린 정당해산심판 및 그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법원에서 이를 다룰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함**

● 원세훈 사건

-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유죄 인정 부분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 원심에서 공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 증거로 채택한 일부 디지털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위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함**

● 김기종 사건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게 위협을 가한 김○○에게 **살인미수죄 등 적용하여 중형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고합253 판결**

▶ 피고인이 과도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 등을 찌른 행위를 **살인미수죄로 의율**하고,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심각하게 공격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함**



● 쌍용차 대책위 주최 걷기대회 사건

- 걷기대회 집회참가자들이 4~5분 가량 도로를 점거하였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도13782 판결

- ▶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인해 비록 단시간이나마 교통 방해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

-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를 이끌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체제 도전 행위에 제동을 걸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 ▶ 이 사건 빨치산 추모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이고, 피고인이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인솔하여 이 사건 전야제에 참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 등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밀양 송전탑 사건

- 고압송전선 및 송전탑 위치 문제를 두고 밀양 주민과 한국전력 사이의 대립과 농성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던 상황 ⇨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용결정,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기각결정으로 갈등의 확산 방지와 분쟁 종식에 기여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 10. 9.자 결정문 이유 中

- ▶ “송전선로 공사는 공익사업으로서, 국가 전체 전력 수급계획에 근거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것이고,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할 경우 변전소의 과부하와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한다”

● 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건

-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정부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이 법



적으로 유효함을 선언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판결

▶ 어느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중략)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중략)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전국가적 재난상황의 조기 극복 방안 제시**

- 미국 9·11 테러 관련 VCF(Victims Compensation Fund)에 의한 보상 제도 벤치마킹 ⇨ 법관 등이 참여하는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한 신속하고 중국적인 배상 및 보상 방안 국회에 제시
- 사법부 제시 법률안이 그대로 반영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③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 **통상임금 사건**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약 38조 원으로 추산됨)**을 최대한 고려하여, 노사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제시함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도 정기상여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도,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시킴

●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 사건**

-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할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하급심 판결의 대체적인 입장임(대법원 계속 중인 2012다115991 사건의 원심 등 다수)
- 그럼에도, ① 중복할증 시 기업의 막대한 추가 부담(약 8조원 + 향후 매년 약 2조원)을 고려하고, ② 노사정의 자율적 타협을 존중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결과 도출시까지 대법원 판결 선고를 잠정 보류하고 있음

●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사건**



-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고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 국공립대학이 10조 원이 넘는 기성회비 반환으로 큰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 모면케 함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 ▶ 국공립대학이 학생들에게 부과해 온 기성회비는 교육 서비스와 학교 시설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징수라고 판시하며, 기성회비 반환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키코 사건**

- 금융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게 대립한 사건에서 양측이 승복할 수 있는 결론 도출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

- ▶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사건**

- 철도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라 추진된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하여 이를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등 분쟁·갈등 상황을 종식시킴

☑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여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철도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함

▣ **④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관련**

● **KTX 승무원 사건**

- ▣ 공공 부문 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쟁점이 관계된 사안에서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함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 ▶ KTX 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고, 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음

● **정리해고 사건**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이고 유연한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 ▶ 약기 제조업체인 콜텍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봄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 ▶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

● **철도노조 파업 사건**

- 노사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하여 파업의 법적 기준을 정립함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 ▶ 철도공사는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아 사측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파업을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철도노조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사건 ⇨ 유효 여부에 따라 향후 노동조합의 운영방식 전반에 큰 파급력 예상(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지 여부, 사용자가 새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기존 노조 재산의 귀속 등)

☑ 대법원 2012다96120 사건

- ▶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금속노조의 산하조직)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피고)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자,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 임원 및 조합원으로서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조직형태 변경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 ⇨ **2015. 5. 28. 공개변론 실시, 추후 대법원 선고 예정임**

▣ **5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관련**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국가공



무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 민주주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2015. 9. 5.

사법정책실

1. 검토 배경

▣ 대통령의 '상고심 법관'에 대한 임명권 침해 문제

- 비우호적 또는 반대 입장의 공통된 문제의식
- BH 측이 선뜻 상고심 개선 방안을 찬성할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임

▣ '민주적 정당성' 쟁점은 상고심 개선 여부의 가장 큰 고비임

2. 현재 대안

가. 개요



나. '선정' 절차의 구성방안

1) '선정'의 의미

▣ 임명절차 중 핵심 단계에 해당

- 1.5~2배수 후보자 중 1배수를 선정하는 것이 임명권 행사에 다름 아님
 - 그 이후의 '검증'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통과되는 절차임
 - '임명'은 이론상 '거부권'이 있으나, 사실상 행사가 어려움

2) 선정절차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

■ CJ 입장

- 헌법상 임명권의 중핵에 해당함
- '형해화' 또는 '포기'로 인식되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제기될 우려 있음

■ BH 입장

- '추천위'에 참여·개입보다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중요
- '선정'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 큼
- '선정'에 명시적으로 개입하여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발생하는 것도 불희망

■ 야당·시민단체의 이중적 입장

-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에 준하는 정도의 **민주적 정당성 요구**
 - 단순한 추천위 구성의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님
 - 행정부·BH의 의견 청취 또는 의견 존중을 담보할 절차적 요구임
- 추천위 구성에 대한 비판은 많으나, '선정' 과정에 대한 비판은 많지 않음
 - '선정'이 임명권 행사의 본질이고, 전속적 권한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선정' 결과에 대한 비판은 할지라도 그 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요구는 없음
- '선정' 과정에 'BH와 협의'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듯
 -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권교체 이후를 바라보고 묵인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시민단체·학계·비판 언론 등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 프레임이 제기 되면 이를 방기하거나 묵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3) 법률안

■ 문제의식

- '최종심 법관'이므로, 'BH와의 실질적 협의'를 의미할 수 있는 문구 필요
- CJ의 헌법상 임명권 또는 사법부 독립의 침해 논란도 방지해야 함

■ 대안

- (1안) CJ는 **BH와 협의하여** 상고법원 판사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
- (2안) CJ는 **BH의 의견을 들어** 상고법원 판사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
- (3안) CJ는 **정부 등 각계의 의견을 들어** 상고법원 판사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
- (4안) CJ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어** 상고법원 판사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

4) 검토

■ '선정'은 CJ의 전속적 권한이나, '마음대로 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됨

- CJ가 최종후보자 선정 시 의견 청취 과정 필요
 - 추천위에서 정한 1.5~2배수 전체를 공개한 후 의견 청취하는 것도 가능함

■ 특정 입장만 고려하는 인상을 주면,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우려됨

- 1안 및 2안은 이 점에서 부적절함

■ BH 입장에서 '선정'에 대한 **CJ의 진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야 함**

- 4안은 BH를 '사회 각계'에 포함시킨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BH에 신뢰를 주기에 부족함

■ 3안이 타당

- CJ의 선정권 행사의 신중함 + 의견수렴 외관 창출 가능
- 다양한 입장 및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 반영
- BH 입장에서 볼 때 '정부'라는 중립적 표현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의견 청취 의무를 명시하여 절차적 권한 보장

3. 추천위 구성에 대한 재검토

가. 현재 대안

■ '대법관추천위'와 달리 BH 관여도가 대폭 강화된 상태임

- 대법관추천위 → [법조 3륵] + [법원 2명] + [학계 2명] + [덕망 3명]
- 현재 대안 → [법조 3륵] + [BH 3명] + [덕망 3명]

나. 논의의 필요성

1) 문제의식

■ 임명절차의 핵심인 '선정' 절차에서 BH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

- 사실상 '최종후보자'의 결정권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BH가 '선정'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추천위' 단계까지 주도할 경우, 비판이 제기될 우려 있음

- 'BH의 관여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외부적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대법관, 일반 법관만이 아니라 BH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대상에 대해 '추천' 절차까지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움

- CJ의 헌법상 임명권 또는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불필요한 논란 제기 소지 있음

- 추천위 구성의 편파성, 공정성·중립성 상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음

■ BH가 추천위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BH의 위상·권한에도 맞지 않음

- 결정권자가 직접 토론의 당사자가 되는 식이어서 스스로 격을 낮추는 것임

■ BH가 추천 및 선정 절차에 이중으로 관여할 필요성도 사실상 없음

2) 소결

■ BH의 최종후보자 결정 관여도와 추천절차 관여의 필요성은 반비례 관계임

- BH가 최종후보자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을수록, 추천절차에까지 이중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짐
- 반대로, BH가 최종후보자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가 낮다면, 역설적으로 추천절차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임

■ '선정' 절차에서 CJ·BH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여 사실상 임명권의 공동 행사를 전제로, 추천위에 BH가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함

다. 추천위 존치 여부

1) 문제의식

- '선정' 절차에서 CJ·BH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여 사실상 임명권의 공동 행사한다면, 굳이 '추천위'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임
- 실질적으로 현직 법관이 대부분 보임될 것이므로, CJ가 제시하는 대상자 중에서 BH의 거부대상자를 제외하면 간단하지 않은가 하는 점임

2) 검토

■ 추천위가 없을 경우, CJ·BH 협의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CJ 입장에서는 BH와 직접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움
- '추천위'가 CJ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절차이자 완충지대가 될 수 있음

■ 추천위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임

- '민주적 정당성'이 단순히 대통령, 국회, 행정부와의 협의로 축소 해석되어서는 부적절함
- 추천위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통로로 기능하게 하고, 그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외관도 매우 중요함

■ BH가 선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더라도, 추천위는 여전히 필요함

라. 추천위 구성 방안

1) 대법관추천위와 동일한 방안

▣ [법조 3륵] + [법원 2명] + [학계 2명] + [덕망 3명]

2) 일부 변형안 ⇨ 모두 가능

▣ (1안) [법조 3륵] + [학계 2명] + [덕망 3명] ⇨ '법원 2명' 제외 방안

- 대외적으로 'CJ 권한 내려놓기' 방안으로 인식될 필요 있음
- 대부분이 현직 법관으로 보임될 것이므로, 법원 측 인사를 과도하게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BH 입장**에서도 '추천위'가 객관적·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선정' 절차에만 개입하려고 할 것임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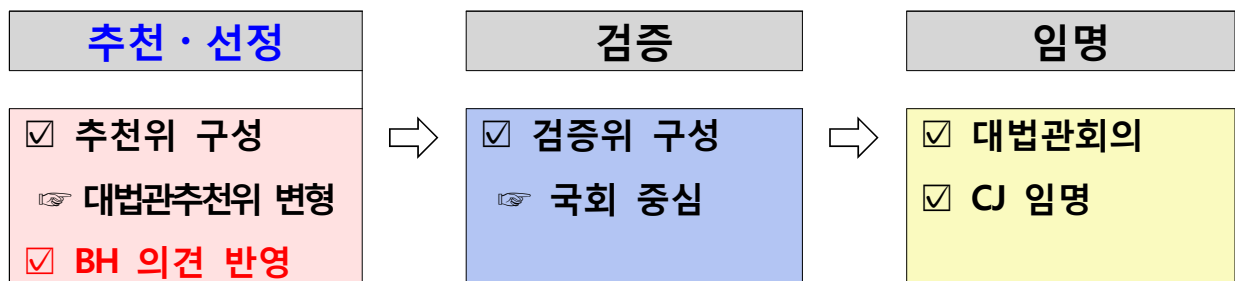
▣ (2안) [법조 3륵] + [법원 1명] + [학계 2명] + [덕망 4명] ⇨ '선임 대법관' 제외 + '덕망자' 1명 추가 방안

-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이므로, '선임 대법관'과 역할이 중복되는 면 고려
- '선임 대법관'을 유지하고 '일반 법관'만 제외할 경우, 법관 사회의 반발 및 외부의 비판적 시선 예상
- '덕망자' 1명 추가는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 (3안) [법조 3륵] + [학계 1명] + [덕망 3명] ⇨ '학계 1명' 제외 방안

- 법조 3륵도 각 1명인데, 학계가 2명이라면, 학계가 과도하게 대표되는 것임
- '사시 존치' 등 현안이 정리되면, 학계도 1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형평에 맞음

4. 최종 검토 의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1. 검토 배경

- 9. 19. 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 6. 19. 서울행정법원 **본안**(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1심** 판결 선고 ⇨ **전교조 패소**
 - 6. 23. 전교조 **항소** ⇨ 7. 10.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 7. 22.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재항고 사건 현재 **대법원 계류 중**
 - 9. 30. 고용노동부장관 재항고 ⇨ 대법원 2014무548호로 접수
- 재항고 사건 **진행 방향 예측**과 그에 따른 **과급 효과 분석** 등이 필요
 - 재항고 **인용 여부**와 **시점** 등에 따른 **득실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2. 결정 내용 ⇨ 재항고 인용 여부

가. BH 입장 분석

- 인용 결정 후 BH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
 -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 ⇨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한 것으로 입장 정리
-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과 함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함
- 만일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측
 -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 사업**(ex.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에 대한 **견제·방해**가 예상됨

나. 대법원 입장 분석

■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지는 않고 있음

- 분명 중요 사건이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이기는 하나, 사법부 입장에서 최대 현안으로 보는 것은 아님 ⇨ 많은 사건 중 하나(one of them)에 불과함

■ 현재 대법원의 최대 현안은 상고법원 입법 추진 ⇨ 이에 대한 BH를 비롯한 각계의 협조·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특히 BH 주요 보좌 라인의 親검찰·법무부 성향으로 인하여 BH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법무부의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다. [검토] 재항고 인용 결정 ⇨ 양측에 원원의 결과가 될 것임

		BH	대법원
재항고 기각 결정 시	전교조	- 최대 현안 ⇨ 상당한 손해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상고법원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 최대 현안 ⇨ 상당한 손해
재항고 인용 결정 시	전교조	- 최대 현안 ⇨ 상당한 이득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상고법원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 최대 현안 ⇨ 상당한 이득

■ 재항고 기각은 양측에 모두 손해가 될 것이고, 재항고 인용은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될 것임

- 재항고 인용의 경우 양측에 손실은 크지 않을 것임
 - BH ⇨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지원하는 데에 별다른 손해·출혈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 아님
 - 대법원 ⇨ 전교조 사건 선고로 인하여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것 아님

3. 결정 시점

가. 고려 사항

■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에 관한 분석 필요

- 결정 시점에 따라 劇的 效果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임
- BH는 대법원과 현재라는 두 사법최고기관이 어려운 국정 현안에 얼마나 조력·협력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 기관을 평가할 것임 ⇨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시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
 - 평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부정적 반대급부가 주어질 것임

■ 주요 사법 현안의 처리 일정 최우선적 고려

- 특히 함께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과 상관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음
 - ⇨ 그러나 연내 선고 가능성 높음
 - 다만, 12. 11.~14.경에 강○○ 재판관의 해외 방문 일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직전 또는 직후의 목요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12. 18.(목) 또는 다소 이례적이지만 12. 10.(수)이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현재 관계자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선고기일 통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데, 선고기일 얼마 전에 통지를 하는지에 관하여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함 ⇨ 일단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확인해주기로 하였고, 여타 비공식적인 확인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본 사안과 관련 사건인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결정 시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
-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결정 시점보다 늦어질 경우 효과 반감 우려

■ 기타 주요 정치 일정 고려

- [BH] 현재 사자방 국조,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컨트롤하기 힘든 현안들이 줄지은 상태 + 게다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 국정 난맥상이 노출 ⇨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예민함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국면
- [국회] 12월 중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개최 예상되나, 국회의장 해외 순방 일정 등으로 인하여 원포인트에 그칠 전망 ⇨ 의원들의 현안에 대한 관심·결집력 등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임
- 세월호 사건으로 미루어놓았던 해외 시찰, 연말연시와 내년 초 전당대회 (야당의 경우) 등을 대비한 지역구 관리 등 ⇨ 12월에 서울에 머무는 의원 자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법무부·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에 대한 VIP의 철저 수사 방침에 따라 분주한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임
- 기타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임
- [상고법원 관련 법안] 빠르면 금주 후반, 늦으면 내주 중에 발의될 것으로 예상됨

나. 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

- 최우선 고려 요소인 현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 이전과 이후를 대상으로 분석함
- ①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은 12월 중순[12. 10.(수) 또는 12. 18.(목)]일 가능성이 높고, ②그 결론은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제함
- [[1]안]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
- 아직 현재의 선고 이전이므로 대법원의 긍정적 이미지가 독자적으로

부각될 수 있음

- 단,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일수록 주목도도 높아지는 것임[High Risk, High Return] ⇨ 지나치게 빠른 시점에 결정하는 것은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다만, 이후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에 가리어 긍정적 효과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하지만 逆으로 결정에 불만을 가지는 측의 반발도 통진당 선고와 함께 가라앉을 가능성이 큼 ⇨ 오히려 통진당 선고에 임박한 직전 시점으로 결정 시점을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이 됨
- 또한 국회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12월을 넘어서지 않는 시점에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야당의 조직적인 반발을 피할 수 있는 적기이기도 함

■ [②안]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후에 결정**

- 만일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 결과가 BH·법무부의 기대와 달리 기각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 이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더욱 극적 효과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음 ⇨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음
- 현재 현재 수뇌부는 검찰 출신, 특히 이른바 ‘공안 검사’ 출신임 ⇨ 박○○ 소장, 안○○ 재판관
- BH·법무부와 상당한 교감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는, 사건의 무게·중요도 등을 고려하면,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 이후에는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 결정이 그다지 주목받기 어려울
- 또한 국회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12월 이후에는 이전에 비하여 야당의 조직적인 반발 가능성이 높아짐
- 게다가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재가 교원노조법에 대한 합헌 결정

을 서둘러 선고할 수 있음 ⇨ 그 선고 이후에는 아무런 주목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오히려 현재의 결정에 대법원이 기속되는 듯한 매우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할 수 있음

다. [검토]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 ⇨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선고 시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 있음

4. 후속 조치

가. 반발 세력 무마

■ 야당 의원 반발

- 재항고 기각 시에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과성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12월에는 해외 시찰·지역구 관리 등으로 서울에 있는 의원 자체가 적을 것 ⇨ 사안에 대한 대처력·응집력이 대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사정 정국이 진행 중이므로 대법원에 대하여 강한 비판에 나설 의지도 부족할 것임
 - 현재 수사·재판 중인 의원 수 '야당 34 대 여당 5' ⇨ 결국 야당 의원들에게 최후의 의지 대상은 대법원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진보 성향 언론 비판

- 다소 비판·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현안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 관심이 분산되어 지속적이고 거센 비판은 없을 것으로 보임
 - 국민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직접적으로 BH를 겨냥하는 현안들이 많음 ⇨ '십상시', '문건 유출'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결정 내용에 그리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 없을 것임

나. 본안 사건 처리

■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어차피 1심 선고도 8개월가량 소요되었음
 - 2013. 10. 24. 접수 ⇨ 2014. 6. 19. 선고
 - 곧 법원 정기 인사 시기도 다가옴 ⇨ 해당 재판장(민○○ 수석부장판사) 교체(법원장 발령) 가능성 높음
- 긍정적 이미지를 최대한 지속시킬 수 있음

■ 결론은 해당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도출하면 될 것으로 보임

- 재판장이 교체될 경우 본안에 관한 화해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도 가능 ⇨ 사회적 이슈화된 문제의 대승적 해결 시도 이미지 과시
 - ‘전교조는 문제가 된 해직 노조원 9명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하여 법내 노조로서 요건을 충족한 후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와 같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조정안 제시
- 만일 결국 판결에 이르게 될 경우에도 재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
 - 결정문에 결정 이유가 기재되는 경우 더욱 그러할 것임
- 설령 대법원의 잠정적 결론과 다른 방향의 결론이 본안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심증이 집행정지 사건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공개된 이상 BH 등의 동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오히려 대법원에 의한 하급심 판결 교정 기능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다. 협조 요청 사항

- BH가 대법원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

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적극 협조 ⇨ 법무부의 반대 무마
-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 적극 협조 ⇨ 내년 초 예정
- 재외 공관 법관 파견에 적극 협조 ⇨ 외교부의 긍정적·전향적 태도 유도
- 한정위헌결정 관련 적극 협조 ⇨ 헌재와 의견 대립 시 협조 요청
- 법관 정원 증원 추진에 적극 협조 ⇨ 약 30명의 추가 증원 등에 국회·기재부의 적극 협조 유도 [끝]



‘성완중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2018. 6. 5.

기획조생실

1. 검토 배경

■ 4. 9. 성 전 회장, 자살 전 인터뷰 및 유서에서 정치인에 금품제공 주장

☑ 주요 내용 (8인 중 6인은 금액 명시)

- ▶ 허태열 전 비서실장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전 리베라 호텔에서 7억원
- ▶ 김기춘 전 비서실장 2006. 9.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10만불
- ▶ 홍문종 의원 2012년 대선 전 2억원
- ▶ 홍준표 경남지사 2011. 6. 한나라당 대표경선 전 1억원
- ▶ 유정복 인천시장 3억원 ▶ 부산시장 2억원
- ▶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해 ‘내가 뭐 얘기하면 물러날 텐데. 처신을 잘 해야 한다’
- ▶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 섭섭함 토로

■ 정국에 큰 파장 예상 ⇨ 파급의 범위와 정도 분석 필요

- BH 주도 사정정국에서 오히려 친박 실세 정치인의 금품 의혹 발생
- 여, 야 정치권은 물론 BH와 검찰·법무부까지 전방위적 후폭풍 예상

■ 먼저 ①‘리스트’를 촉발시킨 사정정국의 경과를 살펴 리스트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한 후 ②당정청을 비롯한 정국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③사법부에 미칠 영향 예측을 통해 대응방향을 검토하기로 함

2. 사정정국의 경과

가. 배경

■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 3. 12. 국무총리 취임 직후 대국민담화 ⇨ 부정부패 발본색원 의지 천명



☑ 주요 내용

- ▶ ① **방위 사업** 관련 비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일
- ▶ ② **해외 자원 개발** 관련 배임, 부실 투자 등은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
- ▶ ③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비리는 경제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
- ▶ ④ **공적 문서 유출**은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 행위

● [정치적 합의①] ‘방위 사업 및 해외 자원개발’ 조준 ⇨ **당청 관계 주도권 회복**

- 당권을 장악한 **非朴계**에 대한 반격이자 **親李계**에 대한 경고메시지
- ※ 특히 대형 수사의 단골 소재였던 방위 사업 비리와 달리, 굳이 자원 개발 비리를 명시한 것은 **친이계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으로 해석됨
- ①前 정권 **치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②**현 정권의 도덕성·청렴성을 부각**시키며, ③**정책면에서도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다목적 카드로 풀이됨

● [정치적 합의②] ‘대기업’ 조준 ⇨ 경제활성화에 **재벌의 적극 협조** 주문

- 최○○ 회장에 대한 가석방 지연, 조○○에 대한 실형 선고 등으로 **재계가 司正 국면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 활용

● [정치적 합의③] ‘공적 문서 유출 사건’ 조준 ⇨ **공직 기강 확립을 통한 레임덕 방지**

- 나머지 항목과 무게감이 다름에도 대등하게 나열 ⇨ **공직 사회에 강력 경고**

● ⇨ **집권 3년차 국정동력 강화**를 목표로 함

- 역대 정권의 집권 3년차는 **집권 세력과 차기 세력의 헤게모니 다툼**이 시작되는 시기 ⇨ **조기 레임덕 방지를 위한 강력한 어젠다 및 대형 수사 기획**

☑ 역대 정권의 ‘집권 3년차 어젠다’ 및 대형 수사 사례

- ▶ **참여정부** ⇨ **대연정 제안**(2005. 7.) + **두산그룹 비자금**(2005. 6.) 및 **론스타 주가조작 수사**(2005. 10.)
 - 이후 현대차 비자금 및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로 이어짐
- ▶ **MB정부** ⇨ 세종시 수정안 및 4대강 사업 강행, 대북 강경제재(2010년 상반기) + **한화그룹 비자금**(2010. 9.) 및 **씨엔그룹 수사**(2010. 10.)
 - 이후 부산저축은행 및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수사로 이어짐



- 특히 현 정권의 경우 집권 초기 2년간 가시적 성과·업적이 없는 데 따른 초초감·불안감 있음
- ※ 집권 3년차 카드로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개선도 물밑 준비 ⇨ MB의 회고록(남북정상회담 관련 북한의 거액 요구 폭로), 주한 미국대사 피습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일단 포기함

나. 수사 진행경과 및 분석

■ 방위 사업 비리 수사

- [외형상 성과] 담화 발표 당일인 3. 12. 일광공영 이○○ 회장 구속 영장 청구, 3. 21. 황○○ 전 해군 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 등
- [성과에 대한 비판]
 - 2014. 11. 초대형 규모의 합동수사단을 꾸리고도, 5개월간 감사원에서 넘겨 받은 자료나 이미 언론에 알려진 비리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① 가장 사업비 규모가 큰 육군과 관련된 수사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음
 - ② 3. 29. 이○○ 회장의 비밀 컨테이너 등을 확보하고도 정치인 로비 등 의혹에 관하여 진척이 없음

■ 자원 개발 비리 수사

- 성 전 회장의 경남기업이 첫 타겟
 - [최초혐의] 자원 개발 명목의 성공불용자금 330억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
 - [영장청구사실] 분식회계, 재무상태 속여 대출사기, 회사 돈 횡령
- 무리한 기획 수사의 한계 드러냄
 - ① ‘최초혐의’의 입증 어렵게 되자 분식회계 등으로 혐의 전환 ⇨ 본래 적 의미의 자원개발 관련 비리 수사에 실패하고, 성 전 회장 자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저인망식 수사로 통상적 기업 비리 성과를 낸 것에 불과
 - ② 수사 대상 선별 실패 ⇨ 성 전 회장과 친박 실세와의 교류를 간과한 채 성 전 회장을 ‘MB맨’, ‘자원외교의 상징’으로 무리하게 낙인찍음



☑ 사설 [청와대 하명 수사 밀어붙이더니 청와대 발등 찍은 검찰] (4. 11자 조선일보)

‘청와대가 하명(下命)하고 검찰은 그 하명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잘못된 관행이 결국 일을 내고 말았다 ... 비리 수사는 장기간 내사를 벌여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나면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경남기업 수사는 청와대 하명에 떠밀려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지금 검찰이 진행하는 다른 비리 수사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준비 부족 상태에서 수사를 밀어붙이다 보니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애초 목적과 다른 **별건 수사에 매달리고**, 무차별적 압수 수색을 하게 된다. 조사받는 쪽도 **수사의 정당성을 수증하지 않고**, 급기야 성 전 회장처럼 자살로 결백을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 대기업 수사

- 담화 발표 다음날 포스코건설 압수수색 등 비자금 수사, 동국제강 및 포스코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비자금 수사 등으로 확대 진행 중
- [재계압박에는 성공] 전경련·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임금인상 요청에 대하여 ‘공동반대성명’을 준비하다가 급거 일정 취소
- 예상
- 동국제강 사건 등은 이미 4년 전에 이루어진 국세청 조사결과 등을 재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 있음
- 신세계 그룹 오너의 70억 비자금설, 동부그룹의 비자금 조성설, 롯데쇼핑에 대한 수사 재개설 등이 검찰발 수사첩보로 무차별적으로 보도되면서 재계의 반발 및 검찰의 부담 가중되고 있음
- 정관계 로비 혐의로 신속히 수사가 확대되지 않는 한 수사 위축될 가능성

☑ 대기업 수사 관련 (3. 30자 일요신문)

‘포스코건설 수사가 잘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포스코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검찰로서는 당분간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필요가 있어 새로운 사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前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

- 박○○ 전 교육문화수석의 외압 및 비리 관련 수사 ⇨ 두산그룹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



- [한계] 前 정권 핵심실세로 보기는 어려움 ⇨ 현 정권의 도덕성 부각 효과 미미

3. ‘성완종 리스트’ 가 미칠 영향 분석

가. 기본 전제 : 리스트의 신빙성과 쟁점 분석

▣ 신빙성 ⇨ 상당함

- 부합하는 정황 속속 드러남

- 전달 장소, 일시,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실제에 부합함 (ex: 김기춘 전 실장은 2006년 당시 롯데호텔 헬스클럽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 2012년 대선 당시 성 전 회장은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에 있었음(대선 바로 다음날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도 공동 선대위원장인 정몽준 바로 뒤에 자리함)
- 명단 중 유일한 非朴 인사인 홍준표 도지사 부분 ⇨ 전달자가 사실상 시인

☑ 홍지사 1억원 수수 관련자 반응

- ▶ 홍지사 ‘나는 받지 않았지만, 돌아가시는 마당에 내용이 허위나 음해라고는 생각 안 한다. 측근을 빙자해 받을 수 있다’
- ▶ 윤○○ (2010년 당시 홍준표 당 대표 경선 캠프 공보특보)
 - ‘(성 전 회장이) 말씀하신 마당에 내가 틀리다고 할 수 있겠느냐’
 - 검찰 출석 및 진술 협조 의사 밝힘
 - 언론에서 ‘홍준표 캠프 출신 윤○○씨’로 소개되는 인물로서 동아일보 차장 출신,
경남기업 부사장 및 2011년 서청원 당 대표 경선 캠프 공보실장 역임
 - ‘친박 1095일’ 등의 저자로서 친박계 내부 정보에 밝음 ⇨ 추가 폭로 가능성

- 객관적 진실에 다소 어긋나는 부분 드러나더라도 자살 전 발언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국민적 의혹은 가라앉기 어려움
- 야당 문재인 대표 ‘허태열, 김기춘 두 분이 정말 왜 연이어 비서실장 됐는지 이유가 드러났다’



- 성 전 회장의 측근을 인용해 ‘정치자금 150억원 규모’ 라는 기사 등장

▣ 쟁점의 확산 : 친박 실세 비리 ⇨ VIP 대선자금 문제

- 4. 10. 공개 당일 ‘친박 실세들의 정치자금 의혹’
- 4. 11. 경향신문, ‘2012년 대선자금 명목으로 주었다’는 녹음파일 공개 ⇨ 공소시효 등 수사 장애물 사라지고, 대선자금 뇌관 건드림

▣ 지속적 확산 가능성

-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과의 50분 분량 인터뷰 녹음파일 보유 ⇨ 현재 이틀에 걸쳐 각 3분 분량만 공개
 - 폭발력이 큰 대선자금 부분을 서두르지 않고 둘째 날 공개하는 등 단계적 활용 전략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금품 전달시 수행하였다는 경남기업 직원 등에 대한 집중 취재 예상
 - 윤○○ 부사장의 태도 및 언론이 묘사하는 성 전 회장과 직원들의 끈끈한 관계 등에 비추어 추가 폭로 가능성 있음
- 새로운 ‘리스트’ 현출 가능성 ⇨ 이른바 ‘3대 리스트’ 문제
 - 사정정국의 3대 타겟인 방산비리/자원외교/대기업 관련하여 이 사건 이전부터 아래 리스트 거론 ⇨ 사태 추이에 따라 새로운 리스트 드러날 가능성
 - ①방산비리 관련 일광공영 ‘이○○ 리스트’
 - ②자원외교 관련 경남기업 ‘성완중 리스트’
 - ③대기업 관련 포스코건설 부회장 ‘정○○ 리스트’

나. 對BH 영향 분석 ⇨ 국정 장악력 및 주도권 상실 우려

▣ 치명적 부담

- [의혹의 대상 측면에서] ⇨ 사실상 VIP 겨냥
 - 현 정권 1~3대 비서실장 모두 포함



- 2007년 대선 경선 및 2012년 대선 과정의 친박 핵심 인물 대거 포함
- 사실상 VIP를 겨냥한 의혹임
- **[의혹의 내용 측면에서] ⇨ 정권의 도덕성 및 정통성과 직결되는 금품 및 대선자금 문제**
 - 현 정권의 가장 큰 자산은 역대 정권에 비해 우월한 도덕성과 VIP의 청렴·진정성에 있다는 것이 보수언론의 평 ⇨ 이번 사정정국 드라이브 역시 도덕성에 대한 자신감에 근거함
 - 정권 출범 후 금전비리나 정치자금 논란 없었음 ⇨ 성완중 리스트는 최초의 금품비리일 뿐만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대선자금 의혹임
 - ⇨ 도덕성에 대한 신뢰 손상 및 금권 선거 논란으로 국정지지율 급락 위험

■ BH 반응

- **표면적 반응** ⇨ 사태 초기 확산 방지에 총력
 - 사건 당일, 언론 접촉을 극히 꺼리던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하여 3명의 전, 현직 실장 모두 언론에 직접 적극 해명
 - VIP, 사건 이틀만인 4. 12. 대변인 통하여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 는 성명
 - ※ 위기 정면돌파를 선호하는 VIP 성향상, 신속히 정면대응한 것으로 보임
- **내부적 반응**
 - 30% 이하까지 떨어졌던 국정지지율이 40%로 겨우 회복된 상황에서 최악의 악재 발생으로 인한 대혼란
 - 최근 노사정 대타협 좌초, 공무원연금개혁 부진에 이어 재보선 참패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3년차 국정동력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염려

☑ BH의 트라우마

청와대 비선 개입 의혹 관련, 검찰수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여 국정주도권을 장기간 상실하였던 경험
⇨ 이번 리스트 역시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국정동력에 치명타가 될 것**



- **집권 2년차**를 세월호, 연이은 총리후보자 낙마 등 인사난맥, 정윤희 비선 실세 의혹 등으로 **허비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 ⇨ 3년차 국정주도권 상실에 대한 염려 ⇨ **‘특별한 업적 없는 정권’** 으로 임기 마칠 가능성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 향후 대응 예상

●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가능성**

- 정윤희 비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찌라시예나 나오는 이야기’ 발언 등으로 가이드라인 논란 ⇨ 자기 확신이 강한 VIP 성향에 비추어 ‘대선자금과 무관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일’ 이라는 취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 상존(단 시기, 형태 및 수위 조절할 것임)

● **3년차 골든타임 포기 不可 판단시 ⇨ 국면전환 카드 뽑아들 가능성**

- 기본적으로는 대선자금 문제와는 선을 그으면서 여론이 잦아들기를 기다릴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올 하반기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임기만료까지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초초감 ⇨ 반전을 노린 강력한 카드 활용할 가능성

- ex) 남북 관계 대형 이슈, 개헌 논의, 여야 대선자금 전면 수사 등

☑ **선례① NLL 논란 카드 활용**

▶ 2013. 6. 14. 국정원 댓글 사건 기소로 정권 정통성 논란 ⇨ 2013. 6. 24. 국정원장,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격 공개로 ‘NLL 포기 발언’ 여부 쟁점화

▶ BH, 수세를 벗어나 공세로 전환

☑ **선례② 대선자금 수사 관련 선례 분석**

▶ 2003. 12. 노무현 당시 대통령 ‘2002년 대선 당시 우리가 쓴 불법대선자금의 규모가 한나라당의 1/10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 발언

- 2004. 3. 검찰, ‘한나라당 823억원, 민주당 114억원의 불법대선자금 모금’ 발표

- 송○○ 당시 검찰총장 퇴임 후 강연, ‘검찰이 10분의 2, 3을 찾아냈더니 대통령 측근들이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고 했다’ ⇨ 수사결과 통제·축소 의혹

▶ BH 입장에서의 시사점

- VIP가 야당에 비하여 주요 언론과 여론의 지원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야당의 대선자금 역시 쟁점화** 시도 가능



- 성완중 리스트 폭발력 희석 및 정국에 침착히 대응할 시간적 여유 확보 가능
- 검찰 수사에 지속적인 관여를 통해 불리하지 않은 수사결과 통제 시도 가능성

●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의 역할** ⇨ 유지

- 리스트의 다른 친박 인사와 달리 금액 언급 없음
- 非박계 여당 인사의 발언권이 높아질 상황에 대응하여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민정수석의 역할** ⇨ 책임론 가능성

-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사실상 기획하고, 수사대상자를 권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에 일정한 책임 있음
- ※성 전 회장이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2012. 11.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을 통해 중앙선대위에 합류한 것 등에 비추어 대선과정에서의 성 전 회장의 역할 및 친박계와의 관계에 관해 오판하였을 가능성 엿보임
- 민정수석에 대한 VIP의 신뢰에 비추어 문책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발언권과 위상 다소 위축될 가능성 있음
- ‘성완중 리스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보다 법무부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 있음
- ⇨ 민정수석실의 성향상 실책을 만회하기 위하여 또 다른 기획수사 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다. 對여당 영향 분석

■ **표면적·형식적 영향**

- 재보선에 미칠 악영향 우려

■ **내부적·실질적 영향 : 계파별 이해관계 극명 대비**

- 친박계 ⇨ 패닉, 당분간 활동 위축 불가피

- 친박계 인사가 등장하는 추가 폭로 및 리스트 염려 ⇨ Y, K 의원 등 친박계 다른 여권 실세가 성 전 회장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됨



- **비박계** ⇨ **발언권 강화** 시도
 - 당청 관계에서 당이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
 - ‘성완중 리스트의 최대 피해자가 VIP라면, 최대수혜자는 김무성 대표’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①**친박계와 달리 김무성, 유승민 대표는 성 전 회장의 서산 빈소를 직접 방문**하고, ②**김무성 당대표가 청와대 의견 표명에 앞서 4. 12. 독자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만 보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면서 ‘검찰에 외압이 없도록 당이 앞장서 책임지겠다’ 고 한 것도 같은 문맥으로 보임
 - **친이계** ⇨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등 역공
 - 친이계를 노린 기획수사에 대하여 강력반발하고, 부메랑 효과를 경고해 옴
 - ①**친박계에 대한 역공 필요성은 물론 ②리스트 수사 미진할 경우 재보선 및 내년 총선에서 패배가 예상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철저한 검찰수사 촉구
 - **초·재선 및 쇄신파 의원**
 - 재보선 결과 등에 따라 조기에 BH와의 선긋기에 나서는 계기가 될 가능성 있음
- **향후 대응 예상**
- **표면적 대응**
 -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 여당과 BH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수 밖에 없음
 - 재보선 승리 위해, ‘리스트’ 이슈 희석 및 지역 발전 문제와 인물론에 총력
 - **내부적 대응**
 - 계파간 갈등 심화되면서 내년 총선 공천권 확보를 위한 물밑 다툼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임

라. 對야당 영향 분석

■ **표면적 반응**



- 4. 10. ‘친박 게이트 대책위’ 발족(위원장 전병헌 최고위원), 진상 규명을 위해 당력 집중 ⇨ 단, 여권표의逆袭집 역풍을 우려해 재보선 전략과 직접 연계하는 것은 자제할 방침

- 선거의 유불리 보다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스탠스 유지

▣ 내부적 반응

- 야권표 집결 및 야권단일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 ⇨ 4. 13.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슈화 지속
- 성 전 회장의 참여정부 시절 2차례 특별 사면 전력 및 충청권 야당의원과의 깊은 친분 ⇨ 야당 의원에 대한 금품제공 폭로되거나, 여당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에 촉각

마. 4·29 재보선 영향 분석

▣ 재보선 4개 선거구 전반 ⇨ 젊은 층 투표율 제고 및 야권표 결집으로 야당득표율 상승

- 주요 선거구에서의 야권 분열 등으로 인하여 젊은 층 투표율 저조 예상 ⇨ 성종완 리스트를 계기로 젊은 층의 높은 관심
- 단, 기존 여당 우세지역인 인천 강화읍, 성남중원 ⇨ 특히 성남중원에서 여당이 다소 고전할 가능성 있으나 당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광주 서구을 ⇨ 천정배 선두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서울 관악을

☑ 관악을 여론조사 결과 혼전

▶ 4. 5.자 휴먼리서치 조사결과 (ARS, 응답자 706명) ⇨ 정동영 2위

- 5자 대결시 (무소속 및 정의당 포함)

새누리당 오신환 43.8%, 국민모임 정동영 23.5%, 새정치연합 정태호 17.8%

- 3자 대결시

새누리당 오신환 46.2%, 국민모임 정동영 27.4%, 새정치연합 정태호 21.4%

▶ 4. 5.자 조원씨앤아이 조사결과 (ARS, 응답자 563) ⇨ 정동영 3위



- 새누리당 오신환 43.7%, 새정치연합 정태호 24.9%, 국민모임 정동영 19.9% 등

● **성완중 리스트를 계기로 야권 단일화 압박 증대 예상**

- 단일화시 야권의 승소 가능성이 이번 리스트를 계기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임 ⇨ 범야권 및 시민단체의 **단일화 압박 증대**
- 단일화 가능성은 안개 속 ⇨ ① 현 정권에 대한 대선자금 공격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새정치연합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 있으나, ② 무능한 야당에 대한 심판을 내세우는 정동영 후보가 현재와 같은 지지율 분포 상황에서는 양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

바. 對법무·검찰 영향 분석

▣ **표면적 영향 ⇨ 기본적으로 법무·검찰 특세 계속**

- 4. 12. 청와대 발표에 맞춰 신속한 특별수사팀 구성 ⇨ 엄정한 수사 의지 표명
 - 특별수사팀장 문○○ 대전지검장
 - 특검 또는 특별감찰관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 성과 도출 노력 예상
- 기존 자원외교 수사에 대하여도 지속 수사 방침
 - 실제로는 ‘진퇴양난’ 상황에서 적절한 출구전략 모색할 것으로 보임
 - 성 전 회장 자살과 관련하여 별건수사, 압박수사 등의 논란이 있으나, 야권은 BH 공격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여권과 BH 입장에서는 검찰을 문책하기 어려울 것임

☑ **자원외교 수사 실패론 (4. 10.자 내일신문)**

‘검찰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자원외교 비리 수사 실패론이 거론되고 있다. 공기업 수사가 쉽지 않은데다 권력형 비리에도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 한 변호사는 "용자금 특혜와 로비 정황이 나오지 않고 **일반 기업비리로 결론나면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허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하였다’

▣ **내부적 영향**

- **법무부 장관 역할 증대 가능성**



- 극도로 민감한 정치사안에 대한 수사인 점과 BH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높은 신뢰에 비추어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적극 관여할 것으로 예상
- 종전 사정정국에 비하여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한 부담스런 수사 ⇨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 및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로 외관상 균형을 맞출 가능성
- 참고사항 : 김○○ 검찰총장 임기 2015. 12.까지 8개월 남음

4. 對사법부 영향 및 대응방향 분석

가.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한 기본적 영향 ⇨ 부정적

■ ①국정 이슈에서 후순위화

- 입법부 및 BH의 관심 우선순위에서 '성완중 리스트' 및 대선자금 등의 이슈에 압도될 가능성 큼
- 상고법원 등의 이슈가 ①현재로서는 여론의 높은 지지를 등에 업은 것은 아니고, ②국민 실생활에 당장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정치권 인식도 미흡하기 때문임
- 급박한 정치지형하에서 합리적인 장점 설명 및 설득에도 어려움 예상

■ ②법무·검찰이 국정의 중심에 위치 ⇨ 사법부 영향력 상대적 약화

- BH와 여당 모두,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사 진행 중에 검찰이 반대하는 입법안에 찬성할 가능성 낮음
- 수사종결시까지 상고법원 관련 법무·검찰 설득창구 가동에 어려움

나. BH 국정장악력 저하 상황을 이용한 **돌파 전략** 검토

- 상고법원안 처리 지연의 배경에는 **BH·법무부의 반대 기류가 자리 잡고 있음** ⇨ BH 및 여권의 **국정장악력 상실로 인한 眞空 상태 활용 필요**



■ 국정장악 공백 활용한 돌파 전략

- 정세 분석 ⇨ 특히 리스트 수사 후폭풍 등으로 정국 혼란상황인 경우
 - ① BH는 ‘성완중 리스트’ 및 이어지는 대선자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당분간 국정장악력 및 추진 동력이 크게 감소될 가능성 있음
 - ② 법무·검찰은 리스트 및 대선자금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에 관한 여·야의 다양한 요구 및 문제제기에 시달릴 것임
 - ③ 다수당인 여당의 경우 권력의 무게중심이 BH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는 친박계로부터, 리스트 의혹에서 보다 자유로우면서도 미래 권력을 노리는 김무성 당대표 및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로 보다 더 이동할 것임
 - ④ 김무성 대표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추구하고, 이에 자부심을 갖는 스타일 이므로, 사법부 구성(통치구조)에 관한 중요한 개선방향인 상고법원안에 관하여 김대표에게 주도권과 결정권을 제안하는 듯한 형태로 접근할 여지 있음
- [공략포인트①] 법사위원, 나아가 국회의원에 대한 개별 설득작업을 지속·강화하여 본회의 통과 시도
 - BH 및 여권의 국정 장악력 상실로 인한 眞空 상태에서 각개 격파를 통해 일부 적극 찬성 의원의 견인하에 다수 우호 내지 부지 세력의 묵인으로 법안 통과 시도하는 전략 모색
 - BH로부터의 하달식 법안처리에 거부감 있는 의원들의 경우 BH 장악력 저하시 자율적 판단·의결 촉구 증가 가능성
 - 이미 법안 발의 단계에서 168명의 동의를 이끌어 낸 경험 있음
 - 적극적 지지세력을 추가로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단순한 우호세력 내지 반대하지 않는 세력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함
- [공략포인트②] 김무성 당대표 및 유승민 원내 대표 위상 강화에 따른 전략
 - 금번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채보선에서 승리를 이뤄낼 경우 김무성 대표의 위상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非朴계로서 금번 스캔들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김, 유 대표 상대 집중 설득 작업 ⇨ (김무성 대표의 적극 찬성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반대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 또는 묵시적 찬성 당론을 유도**하는 방안
- 상고법원안에 관한 김무성 대표 설득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정수석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가치 있음
- BH와 무관한 김무성 대표의 독자적인 작품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접근

☑ BH와 여당의 입법 주도권 관련 갈등 (3. 3자 미디어오늘)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부(BH)는 여당 의원을 동원한 입법동력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당과 상의하지 않은 정책들을 입안하면서 스스로 관계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도 떨어지면서 새누리당이 정부와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는 위기감도 높아졌다.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부와 다른 방향의 세재개편을 언급한 것은 ‘경고’의 의미가 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당의 잠재적 후보들이 준비한 가운데 **비박계로 이루어진 지도부를 압박하고 힘겨루기 양상**으로 나간다면 집권 3년차 정부(BH)와 여당의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집권 3년차 때 본격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 **검찰 출신 의원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법사위 1소위 돌파 전략에 관하여는 추가 검토 필요**

다. 상황별 구체적 영향 및 대응방향

■ 4. 20. 법사위의 상고법원 공청회

- 법사위 개최 공청회이므로, 리스트 수사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들의 참석 및 어느 정도 관심 예상됨** ⇨ **기존 설득 및 홍보작업 지속·강화**
- 형사사건의 최종 판단기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되, 여당을 상대로는 상고법원안에 의할 경우 **①일반 형사사건은 정치인 사건이라도(ex: 한명숙 사건) 상고법원에서 신속히 처리되고, ②국가의 근간에 관한 사건은(ex: 원세훈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원칙적으로 판단**되게 된다는 장점을 비공식적으로 어필할 필



요 있음

■ 상고법원 관련 對BH 설득창구 ⇨ 당분간 확보에 어려움

- 비서실장 및 특보단에 대한 신속한 접촉 및 설득에 당분간 어려움 예상됨 ⇨ 6월 임시국회 등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여 특보단을 통한 우회전략은 지속적으로 시도할 필요
- 언제든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태세 확립 ⇨ 검찰·법무부가 리스트 수사 정국에서 시행착오를 겪거나 무리수를 두는 등 실책을 저지르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므로 타이밍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준비하고 있어야 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및 본회의 절차

- 채보선 결과 및 대선자금 등 수사 결과에 따라 입법 주도권을 일정 부분 확보할 여지가 있는 여당 김무성, 유승민 대표 최대한 설득하여 (적어도 묵시적) 찬성 세력으로 확보할 필요
- BH, 여·야, 법무부에 대한 전방위적 설득 노력 지속

■ 리스트 관련 수사진행 과정 및 재판 절차

- 정치적 수사로 인한 무리한 영장청구 및 기소에 따른 후폭풍 ⇨ 법원의 부담 예상됨
- 특히 6월 임시국회까지는 영장의 적정한 발부에 관심 기울일 필요 있음

라. 對BH 및 對입법부 협조 및 우호관계 유지 방안

■ 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협조 방안 ⇨ 당분간 한계

- 기소 전까지는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 방안 없음

■ 이미 계속 중인 주요 관심사건 처리 ⇨ BH측의 입장 최대한 경청하는 스탠스로 우호적 관계 유지



☑ **최근 관심 판결**

- ▶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한 판결**
- ▶ **VIP의 세월호 합동분향소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는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명한 판결**

- '검찰권의 적절한 견제 vs. 정권과의 적절한 관계 유지'라는 틀 속에서 **사법부가 적절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
 - 특히 불필요하게 언론이나 BH의 오해를 살 필요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함 ⇨ 관련 사건 처리 시 **진리가 충분히 설명·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야 함
- **관심 사안의 적절한 처리 시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범의노조 사건, 세계일보 사장 사건 등**

☑ **최근 BH 관심사건 (○○○○ 2015가단5075370, 재판장 김○○ 부장판사)**

- ▶ 원고 조○○(전 세계일보 사장) 피고 주식회사 세계일보, 2015. 3. 26. 소제기
- ▶ **부당해임**으로 인한 잔여임기 보수 상당액 195,988,630원 청구
- ▶ 청구원인
 - 2014. 11. 28. 세계일보 1면으로 '정윤희 국정개입은 사실'이라고 단독보도 후 **서울지방국세청이 2015. 1. 21. 통일교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 김○○ 통일교 총재비서실장은 원고를 불러 "**정부 요인이 2015. 1. 29. 통일교 한○○ 총재 측에 전화를 걸어 '원고를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의 판도라 상자를 열겠다'**고 압력을 가해서 원고를 해임하기로 했다"고 설명
 - 다른 언론사와 달리 피고가 2013, 14년에 흑자 달성한 것은 원고의 경영능력덕분임에도 원고는 '정윤희 문건' 보도 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해임된 것이고, 이는 **정부 측이 재단측과 통일교를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함으로써 이루어진 것**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관련 보고

1. 관련규정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배제결정)

-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해설

가. 의의

- 국민참여재판은 전관예우와 같은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불식시키고, 일반 국민의 시각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난을 극복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재판제도임

나.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극복 노력

- 배심재판이 감성재판 또는 여론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난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의 배심재판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도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배심재판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참여재판이 도입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고, 참여재판을 도입하면서도 전통적인 미국식 배심재판과 달리 ①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 ② 배제결정제도, ③ 법관의 평의절차에서 의견진술 제도, ④ 일반 재판과 동일한 항소제도(미국의 경우 무죄평결에 대하여는 항소 불가)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두었음

- 배심원의 평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미국과 달리, 참여재판은 위와 같은 보완장치를 통하여 일반 국민의 상식과 직업법관의 전문성을 조화시키는 것을 본질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음

다. 배제결정제도

1) 의의

- 현행 법률 제9조 제1항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건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배심원에 대한 위협 우려가 있거나, 공범 중 일부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사건을 분리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거나,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등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도 불구하고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2) 절차

- 배제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만, 결정 전에 반드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검사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배제신청을 할 수 있음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가능
-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효력이 있음

◇ 형사소송법 ◇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3) 판단기준

-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배제사유에 대하여는 해석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제4호의 배제사유(이른바 ‘개방형 배제사유’)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판단기준이 필요함
- 대법원예규 및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실무지침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는 방법으로 개방형 배제사유의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규정·설명하고 있음

◆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예규 ◆

제6조(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

④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1.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경우
2. 피고인에게 정신이상의 의심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현저한 절차지연 등으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2008년, 27-28면) ◆

- 재판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 장기간의 심리가 필요하여 배심원의 과중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 피고인이 여러 명이어서 무이유부기피인원의 증가로 배심원 선정기일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
- 살인사건 등에서 범행방법이나 결과가 끔찍하여 배심원의 직무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
- 사건의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 사건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어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소환하여야 하고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할 배심원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 중요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법원 출석을 확보하기 어렵고 외국에 체류하는 등 언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 관련사건 등의 심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 증인이 많아 1주일 이상 연일개정 등 장기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
- 통상절차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가 대부분 이루어진 후 비로소 공소장이 변경되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정치적 사건과 배제결정

- 최근의 일부 사건들을 계기로 정치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므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정치적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간주하여 배제결정을 하는 것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있음
- 특히 현행 법률이 ①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허용하면서도 배제하지 않는 결정(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제4호의 개방형 배제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취지에서, 위 대법원예규 및 실무지침서도 개방형 배제사유의 구체적인 예시를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법원의 배제결정에 관한 실무운영도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후술 ‘개방형 배제사유의 세부내역’ 참조](#)

5) 개방형 배제사유의 구체화 논의

- 개방형 배제사유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개방형 배제사유를 삭제하고 배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견해가 있음
- 사전에 국민참여재판에 부적합한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법률 등에 구체적인 배제사유로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함.
-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 결정 과정에서도 개방형 배제사유를 대법원규칙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법으로 한정하자는 안건(의안번호 제2013-7호)이 검찰측으로부터 제출되어 논의된바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최종 의결단계에서 부결됨

3. 배제결정 통계

가. 국민참여재판 전체 현황

[2008.1.1. - 2013.9.30.]

		접 수	처 리				미 제
			소계	판결	배제	철회	
2008	건수	233	215	64	61	90	18
	비율	100.0%	92.3%	27.5%	26.2%	38.6%	7.7%
2009	건수	336	308	95	75	138	46
	비율	-	91.7%	28.3%	22.3%	41.1%	-
2010	건수	437	413	162	75	176	70
	비율	-	94.5%	37.1%	17.2%	40.3%	-
2011	건수	489	494	253	63	178	65
	비율	-	101.0%	51.7%	12.9%	36.4%	-
2012	건수	752	672	274	124	274	145
	비율	-	89.4%	36.4%	16.5%	36.4%	-
2013.9.30.	건수	561	591	243	88	260	101
	비율	-	105.3%	43.3%	15.7%	46.3%	-
합계	전체합계	2,808	2,693	1,091	486	1,116	101
	전체비율	100.0%	95.9%	38.9%	17.3%	39.7%	3.6%

나. 배제사유 현황

[2008.1.1. ~ 2013.9.30.]

적용 법조		배제현황	
		건수	비율
제9조 제1항 제1호	배심원 안전 위협.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1	0.2%
제9조 제1항 제2호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50	10.3%
제9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음	48	9.9%
제9조 제1항 제4호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	388	79.7%

다. 개방형 배제사유의 상세내역

[2008.1.1. ~ 2013.9.30.]

제9조 제1항 제4호의 구체적 사유		건수
피고인측 사정	피고인 측이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	193
	피고인이 정신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	16
	추가기소가 예상되는 경우	4
	구속기간의 만료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경우	6
	피고인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	5
	불구속 피고인의 출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1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경우	2

	의사확인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경우	4
	소 계	231
증인측 사정	증인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29
	친족 간 범행인 경우(유족의 명예감정을 배려함)	2
	기타	20
	소 계	51
사건의 특성	전부 혹은 대부분 자백한 사건 기타 심리할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	31
	신문할 증인이 너무 많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심리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26
	경미한 사건의 경우	3
	공소장 변경 등으로 혹은 애초부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사건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음(지나치게 잔인한 사건의 경우 등)	7
	공소기각 대상 등 (고소취하 포함)	15
	통상회부결정(법률 제11조)	20
	소 계	112



세월호 사건의 적정 관할 법원 및 담당재판부 검토

2014. 5. 7.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세월호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최초 기소 ⇨ 5. 16.(금) 무렵 예상
 - 1차 기소시점 예상: 구속선원 15인 중 선장 포함 1차 구속 3인의 구속 만기일 5. 16.(금)
 - 후속 기소시점 예상: 과적·고정불량·증축 관련 청해진해운 관계자 ⇨ 5. 2. ~ 5. 4.까지 3인 구속, 5. 4. 1인 체포 ⇨ 5월 말 ~ 6월초까지 기소 완료 예상
- 세월호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예정됨에 따라, 적정 관할 법원 및 담당재판부를 검토할 필요

2.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 예상 기소 인원 ⇨ 20 ~ 25인

-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인(전원 구속)
 - 급격한 변침 및 구조의무 불이행
- 청해진해운 관계자 4인(3인 구속, 1인 구속영장 청구)
 - 과적 및 화물고정 불량
- 청해진해운 관계자 수인
 - 불법 구조변경을 통한 선실 증축

3. 세월호 침몰 사건 적정 관할 법원

가. 관련 규정



1) 토지관할

◆ 형사소송법 ◆

제4조(토지관할)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 범죄지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로, 실행행위지, 결과발생지, 중간현상발생지 포함

■ 피고인의 주소, 거소

- 주소: 생활의 근거되는 곳 / 거소: 다소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곳

■ 피고인의 현재지

-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

2) 토지관할의 병합 - 관련사건

◆ 형사소송법 ◆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 공동정범, 교사범, 중범, 필요적 공범, 합동범, 공동과실범, 상해의 동시범 포함(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의 원심 중 판시 내용)

나. 관할권 있는 법원



▣ ① 목포지원 ⇨ ‘범죄지’, 선원 및 물류팀 등 구속자들의 ‘현재지’ 관할

-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사고 발생 ⇨ ‘범죄지’ 관할
- 목포교도소에 선원 15명 및 물류팀 3명 구속수감 중 ⇨ ‘현재지’ 관할

▣ ② 인천지법 ⇨ ‘범죄지’, ‘관련사건’ 관할

직책		구속영장상의 죄명				관할결정기준
청해진해운 물류팀 4명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안전법위반				범죄지
선박 직	선장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특가도주선박, 선원법위반, 유기치사,	수난 구호법 위반 ¹⁾		관련사건
	1차 구속 2인				업무상과실 치사	
	이후 구속 12인				유기치사	

- 청해진해운 물류팀 ⇨ 선적지는 인천항 ⇨ ‘범죄지’ 관할
- 선장 포함 1차 구속 선원 3인 ⇨ 청해진해운 물류팀과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관련사건’ 관할(‘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 참고판례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성수대교 붕괴 사건) ◆

▷ 교량붕괴에 있어서의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여부(적극)

- 성수대교와 같은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시공상의 감독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이후 구속 선원 12인 ⇨ 선장 포함 1차 구속 선원 3인과의 수난구호법

1) 구호조치 미이행시 성립



위반의 공동정범으로서 ‘관련사건’ 관할(‘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다. 적정 관할 법원 ⇨ 인천지법

적정 관할 법원 결정시 주요 고려요소는 아래와 같다

■ 목포지원의 인적·물적 시설의 한계

- 기소 인원만 20 ~ 25명으로 예상되고, 다수의 피해자 유가족 등의 방청이 예상되는 세월호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지원 단위 규모인 목포지원의 인적·물적 시설이 부족함
-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 재판연구원 등의 지원을 위해서도 서울 인근에 위치한 인천지법이 바람직함
- 다만, 국민참여법정으로의 개조에 따라, 인천지법의 형사대법정의 수용 인원이 52석에 불과하나, 인천지법 대회의실 등에서의 중계를 통하여 다수의 방청객들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피해자 절차참여 편의성 및 정보접근성 제고

- 인천지법과 목포지원은 모두 이 사건과 지역적 관련성이 있는 토지관할 법원으로서 그 사이에 우열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유가족들의 실질적 절차참여의 편의성과 재판내용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안산에서 원거리에 소재한 목포지원보다 인천지법이 비교우위에 있음

■ 불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 無

- ‘현재지’ 관할법원이 아닌 인천지법에서 재판한다고 하여도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우려가 없고, 목포지원은 현재지일뿐, 인천지법보다도 지역적 연관성이 없음

■ 인천지검의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 진행

- 현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유○○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인 ‘다판다’ 대표 송○○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함

▣ **피고인 측의 관할위반 신청 가능성 낮음**

- 토지관할이 없으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진술하기 전에 관할위반의 신청을 한 때에 한하여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게 되는데(형사소송법 제331조), 가사 인천지법에 토지관할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 측이 관할위반의 신청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임

▣ **최근 언론 동향**

- 조선일보 ‘이○○의 동서남북’ ⇨ ‘세월호 공범들, 같은 법원서 재판하자’

4. 세월호 사건 인천지법 적정 재판부 배당 방안

가. 기본 전제

▣ **유○○ 전 회장 측의 개인비리 사건 ⇨ 일반 사건배당 원칙에 따라 배당**

- 개인비리가 세월호 침몰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일반 경제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유○○ 전 회장 측의 개인비리 사건에 관하여는 일반 사건배당 원칙에 따라 배당할 필요 있음

▣ **세월호 침몰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형사사건 ⇨ 적정 재판부 배당 방안 검토 필요**

- 선박직 15인과 청해진해운 물류팀 4명에 대한 형사사건

나. 관련 규정 ⇨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 **부득이한 사정시 관계 재판장과의 협의 이후 특정 재판부 배당 가능**

- 업무부담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배당방법에 따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음

◇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

제18조(배당의 방법)

② 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재판부의 배당순서에 따라 사건 1건씩을 각 재판부에 배당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라 배정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전문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은 전문사건에 대하여는 각 전담재판부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2. 재판부 사이의 사무분담비율이 다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사건을 배정한다.
3.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③ 업무부담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제2항에 의한 배당방법에 따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이와 다른 방법으로 배정할 수 있다. 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제24조(배당의 절차)

③ 사건배당 주관자는 자동배당 실행 전에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하거나 배당배제를 할 수 있다.

다. 적정 재판부 배당 방안

1) 제1안: 일반 형사재판부 배당

■ 형사합의부 구성: 2.5개 재판부

- 제12형사부(1): 이○○(부산 ○○고, 서울대 법대, 26기), 장○○(38기), 우○○(39기)
- 제13형사부(1): 김○○(대구 ○○고, 고대 법대, 25기), 진○○(37기), 이○○(39기)
- 제14형사부(0.5): 심○○(서울 ○○고, 서울대 법대, 24기), 장○○(38기), 황○○(39기)

■ 장점

- 현행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른 원칙적인 배당의 모습으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 없음



● 수석재판부에 비하여 형사재판경험 多

- 이○○ 제12형사부장: 2013년 인천지법에서 변형부장으로 형사단독재판장 업무 이후 2014년 형사합의부장으로 보임
- 김○○ 제13형사부장: 인천지법에서 2년째 형사합의부장으로 보임
- 형사합의부의 배석은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 처리를 위하여 모두 형사재판 유경험자로 배치됨

■ 단점

-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강구한다는 대외적 홍보효과가 거의 없음

2) 제2안: 수석재판부 배당

■ 수석재판부 구성

- 신○○(19기), 김○○(35기), 하○○(36기)

신○○ 수석부장판사 주요 경력	
(사진)	2002.02.18~2003.02.18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03.02.19~2004.02.17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2005.02.21~2005.08.19.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08.20.~2006.02.19. 사법연구, 사법연수원
	2006.02.20.~2006.12.31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제1심의관
	2007.01.01.~2007.02.20.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총괄심의관

- 현재 사무분담은 파산부, 가사부(파기환송 사건만 담당)

■ 장점

-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수석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사건 처리 가능
-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에 따르는 부담이 적으면서도,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음

■ 단점

- 지금까지 선례가 전무하여 향후 법원의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있음
-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 우려
 - 신○○ 수석부장판사: 2005. 2. ~ 8.까지 대전지법에서 6개월 형사단독재판장 경험 이후 형사재판경험 없음
 - 수석재판부 배석판사: 형사재판경험 없음
- 파산부 업무 담당할 대체 재판부 물색 곤란
 - 수석재판부가 파산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수석재판부에서 세월호 사건을 배당받아 재판진행시, 파산부 업무의 전문적 특성상 마땅한 대체 재판부를 물색하기 어려움

3) 제3안: 특별재판부 구성 및 배당

■ 특별재판부 구성(안)

- 재판장: 수석부장판사 신○○
- 배석판사(안): 신○○(민사2단독, 28기), 윤○○(민사7단독, 29기), 정○○(파산3단독, 30기), 강○○(형사2단독, 31기), 권○○(민사3단독, 31기), 김○○(형사12단독, 31기), 최○○(민사4단독, 31기), 이○○(가사3단독, 법원 임관 수석, 34기), 송○○(민사28단독, 35기)

■ 장점

-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대외적 홍보 효과 극대화 가능
- 경력 있는 단독판사들을 배석판사로 구성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치밀한 심리 가능



■ 단점

- 특정 사건의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의 전례가 없어 향후 법원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있음
- 특별검사기소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정치권에서 이해득실에 따라 기존 재판부 배제 목적으로 특별재판부 구성을 주장하는 일종의 forum shopping 우려

4) 정책 결정: [제1안], [제2안], [제3안]

5. 인천지법 수석재판부 배당시 대외적 명분과 설득 논리

■ 사건의 성격상 신중한 심리 필요

- 정치적 고려에서가 아니라 일반국민의 정서와 관심도,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법리·양형에 있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함
- 대국회나 대언론 차원에서도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의 공정하고도 신중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

■ 형사재판부 배당시 일반 형사사건의 중대한 지연 초래

- 세월호 사건은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기존 2.5개의 합의재판부 중 어느 한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경우 이미 배당되어 있는 일반 사건 처리에 중대한 지연을 초래할 우려 있음

■ 비임의적 사건배당에 대한 대내외의 비판 가능성 낮음

- [대외] 정치적 사건과는 달라 재야에서 작위적 사건배당에 대한 비판제기 가능성이 낮고, 만약 재야에서 비판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사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론의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단편적 시각에 기한 부적절한 비판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 높음
- [대내] 각급 법원 법관들의 비임의적 사건배당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할



수도 있으나, 각급 법원 사무분담 내규 등에 ‘대형 재난사고’ 등의 경우에 한정하여 수석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음

▣ **일반 형사재판부의 과중한 심적 부담**

- 국민적 관심의 집중과 고도의 긴장감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부의 경우 과중한 심적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이는 사건의 공정·신속한 처리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여지 있음

6. 인천지법 수석재판부 배당시 필요 후속조치

▣ **인천지법 형사합의부 증설 및 수석재판부 사무분담 변경**

- 현재 인천지법 수석재판부의 사무분담에는 형사합의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①형사합의부를 증설하고, ②관계되는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수석재판부의 사무분담 변경 필요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

제6조(사무분담의 변경)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다.

1. 재판부의 증설 또는 폐지가 있는 때

2. 일부 재판부의 사무가 과다하여 현저히 사무분담의 균형을 잃게 된 때
3. 일부 재판부의 법관 등이 장기간에 걸쳐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분담의 확정)

④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재판장인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제3항 제1호의 기간 안에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 **고등법원 소재지 지법 및 인천 등 주요 경인지역 법원의 형사합의부 증설 및 수석재판부 사무분담 변경**

- 향후 세월호 사건과 유사한 대형 재난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



여, 사전에 고등법원 소재지 및 인천 등 수도권 소재 대규모 지방법원의 수석부의 사무분담에 형사합의부를 포함시켜 둘 필요 있음

● [참고] 고등법원 소재지 지법 및 인천, 수원지법 수석부 현황

	서울중앙 (형사수석부)	대전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	인천	수원
재판장 (기수)	임○○(17)	허○○(18)	정○○(17)	김○○(17)	이○○(18)	신○○(19)	오○○(19)
형사사건 담당여부	○ (형사신청 합의사건)	× (법인회생· 파산사건)	× (법인회생· 파산사건)	× (민사신청 합의사건)	× (법인회생· 파산사건)	X (법인회생· 파산,가사)	○ (형사합의, 법인회생· 파산사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

1. 상고제도 개선 절박

■ 상고심 현황 ⇨ 사건 폭증으로 물리적 한계 봉착

- ▶ 10여년 사이 상고사건 2배 증가: 18,600건(2002년) VS 37,651건(2014년)
- 2015년 40,000건 돌파 예상
- ▶ 2014년 기준, 대법관 1인당 연간 3,178건, 하루 평균 8건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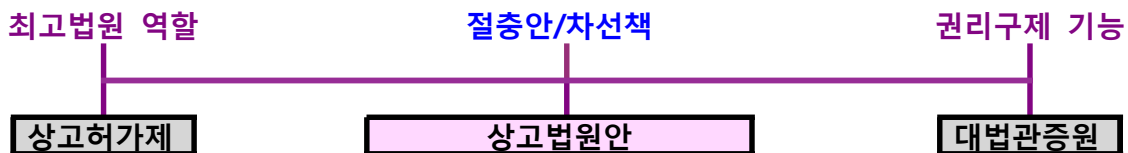
- 정당한 권리자 보호 지연 ⇨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
- 선진 국가 최고법원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의 사건부담 ⇨ 국가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문제

■ 상고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 막대

- ▶ 상고심 소송물 가액 합계 5조원 ⇨ 사건 처리 1년 늦어질 경우, 자본시장 평균 이익률 2%에 해당하는 **1천억 원** 경제손실 발생
- ▶ 상고심 당사자 **12만 명**(논산시 전체 인구수)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 ⇨ 신속한 일상 복귀 필요

■ 현재의 무제한적 상고 허용 정책은 일제 식민지 잔재로서 청산 필요

2. 바람직한 상고심 개선 방향



■ 대법관 증원론의 위험성 및 허구

- **①진보 인사의 최고법원 진출**
 - ❖ 민변 등 진보 세력 배후에서 대법관 증원론 강력 지지 ⇨ 상고법원 도입 좌초되면, 대법원 증원론 대안으로 내세우며 최고법원 입성 시도할 것
- **②미봉책**
 - ❖ 수 명의 대법관 증원해도, 상고사건 적체 문제 해소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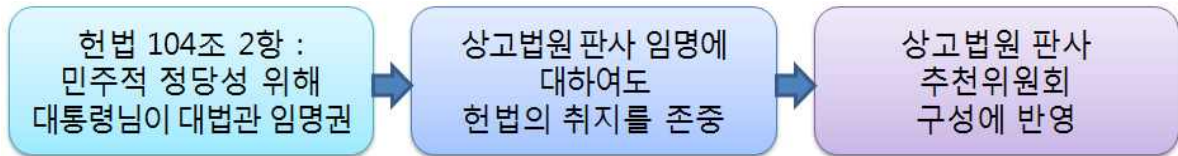
■ 상고허가제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 그러나 **①국민 정서와 괴리**, **②이미 실패한 경험**

■ **상고법원안** ⇨ 최선은 아니지만, **우리 현실에 적합한 차선의 개선 방안**

상고법원 판사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1. 상고법원 판사 임명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준하는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



-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님 意中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2. 상고법원의 역할과 위상

- 상고법원의 실질적 역할 ⇨ **폭행,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등 개인적 분쟁** 처리
 - 국가적·사회적 관심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에서 처리
 - ❖ ①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범위 대폭 확대, ②사건분류 단계에서 정부 의견 최대한 존중
 - 상고법원의 일탈성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통제 가능
- 상고법원은 최종심 법원이지만, **최고법원은 아님**
 - 상고법원 판사는 사실상 대법원이 처리할 가치 없는 간단한 사건의 3번째 심급 담당 법관에 불과, 실질적인 최고법원의 법관 아님
 - ⇨ [대법관에 대한 국회 동의와 대통령님 임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임명절차 마련할 필요성 낮음

상고법원 법률안 의원입법 발의 경위

1. 시기적 불가피성 및 절대적 시간 부족

- ▣ 대법원 2014년 하반기부터 법률안 준비 ⇨ 19대 국회 임기 만료 (2016. 4.)까지 1년 6개월의 시간만 남아 있던 상황
- ▣ 정부입법 과정에서 **법무부의 처리 지연** 또는 **기피 현상** 존재
 - 대법원이 법률안을 법무부에 송부한 후 국회에 발의되기까지 수년 소요된 사례 상당수 존재
 - 대법원이 송부한 법률안 핵심 내용을 변경 시도한 사례도 존재(예: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 사무관장기관을 법무부로 변경 시도)

법률명	대법원이 법무부에 법률안 송부한 시점	정부가 의회에 법률안 발의한 시점	소요기간
행정소송법	2013. 3. 법무부 대법원 합의 도출	법률안 미제출	법률안 미제출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 절차조정법	2008. 11.	법률안 미제출	법률안 미제출
상업등기법	2002. 1.	2006. 3.	4년 2개월
비송사건절차법	2002. 1.	2006. 3.	4년 2개월
사법보좌관법	1999. 2.	2004. 9.	5년 7개월

2. 과거 선례 및 타 기관 관행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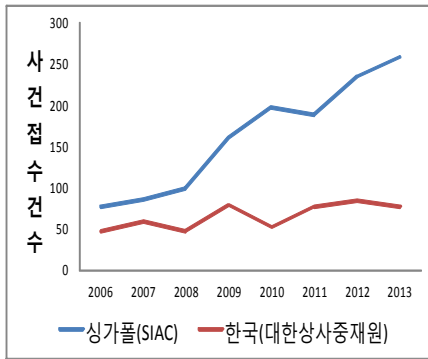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이 자체 조직이나 기능 관련 법률안 발의**하는 경우, 정부입법 아닌 **의원입법** 형식 취함
 - [국회] 국회법이나 국회사무처법 개정안 ⇨ 소관 상임위 위원장 제출이나 의원 발의 형식, 정부 입법은 찾아보기 어려움
 - [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의원 발의
 - [헌법재판소] 현재 설립된 1998년 이후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 59개 中, 정부 제출 단 2회, 나머지는 법사위원장 제출이나 의원 발의 형식

▶ **위헌 형벌법규의 소급효**를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후 시점으로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 ⇨ 2013. 4. 10. **의원 발의**

▶ 헌법재판관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 ⇨ 2013. 2. 19. **의원 발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사법한류 추진

1. 추진 필요성 ⇨ 경제도약 및 국가경쟁력 창출



① 세계경제의 중심 아시아로 이동 중 ⇨ 아시아 지역 국제분쟁 및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 新성장 모델로 설계**

- ▶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최근 8년간 2배이상 사건 증가
- ▶ **중재 사건 1건 유치시 25억 원** 경제가치
- ▶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막대한 **富의 유출**[국내 법률시장 **3조원** VS 국내기업 해외 지급 법률비용 **10조원**]

② 국제사법신뢰도 향상 ⇨ 국가경제발전과 직결

- ▶ **법치주의와 GDP는 비례관계**(이코노미스트誌)
- ▶ 세계은행 발간 기업환경보고서[분쟁 해결 부문] ⇨ 대한민국 사법부 3년 연속 2위
- ▶ **선진 국제사법시스템 구축** ⇨ ① 국가 신인도 상승과 **Country Risk 하락**, ② **외국인 투자 유치와 우리 기업의 유리한 해외진출 기반 조성**

2. 추진 기본 방향 : 인바운드 · 아웃바운드 양방향 전략 추진



① 인바운드 [외국 → 한국] : **IP허브코트, 국제상사법원 및 국제중재기구 설치** ⇨ **국제분쟁해결지로서 위치 선점**

② 아웃바운드 [한국 → 외국] : 개도국에 대한민국의 **법제도 수출** ⇨ 법치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선진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이미지 제고**

☞ **[장기적 목표] 동북아 법률수도**로서 동북아 법률시장에서 맹주 지위 획득

3. 추진 방안

① IP 허브코트 프로젝트

❖ IP와 사법서비스 결합으로 新성장 동력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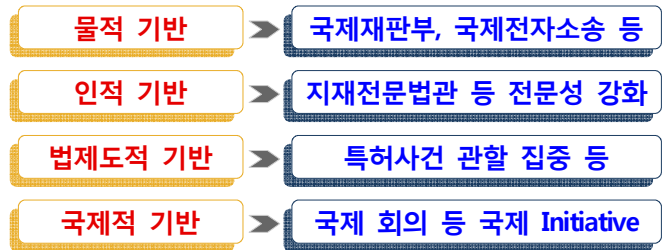
- ▶ 세계은행 평가 **세계 2위의 사법서비스**와 **세계 4위 특허 출원 수**의 각 장점을 융합
- ▶ 아시아권의 **치열한 IP 허브국가 유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국가적 과제

❖ 물적·인적·제도적·국제적 기반형성 필요

- ▶ 국제재판부를 통한 **신속·정확·저비용의 판결**로 글로벌 IP 분쟁에서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는 등 특허법원의 전문성 및 국제적 위상 강화
- ▶ 산업계까지 망라하는 **IP허브코트 추진위원회** 구성 ⇨ 전문성 강화 방안 등 논의
- ▶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개최

❖ 아시아 IP분쟁해결 중심국 지위확보

- ▶ 글로벌 IP 분쟁해결에 관하여 아시아의 중심 법원이자 중심 국가 지위 획득
- ▶ 현재 IP 창출 강국 대한민국 ⇨ **IP 보호 분야 강화로 IP 창출·활용·보호의 삼위일체** ⇨ 진정한 **기술강국** 기반 마련



② 국제상사법원 및 국제중재기구 신설



❖ 국제자유경제구역 내 국제상사법원 신설

- ▶ 인천 송도, 제주도 ⇨ 국제자유경제구역 지정, 법률시장 완전 개방 [세금 면제, 규제 완화]
- ▶ 국제자유경제구역 내 국제화·특화된 경제 전문법원 설립, 외국 재판관 법관 임명

- ▶ 국제상사부, 파산부, 중재전담부, 해사부 등 국제사건 전문 재판부 운영
- ▶ 재판절차에서 영어 사용, 외국 변호사 소송대리 허용

❖ 국제자유경제구역 내 국제중재기구 신설

- ▶ 정부 주도의 법원연계형 국제중재센터 설립
- ▶ 국제중재센터와 중재전담재판부 연계, 집행까지 신속·공정한 원스탑 사법서비스 제공
- ▶ 전문성 갖춘 유능한 중재인 확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중재시설 구비
- ▶ 향후 3년 이내에 **아태 지역 국제중재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 구축

③ 사법제도 수출



❖ 개도국에 사법제도 및 시스템 이식

- ▶ BH 주도 아래 사법부, 법무부, 법제처, 외교부(코이카) 등 **유관기관 참여하여 공동사업 추진** ⇨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도모
 - ▶ 사법시스템과 제도 수출 통한 **법률영토 확장**
 - ▶ 국내 기업 해외진출의 기반 조성 ⇨ 법의 지배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 ▶ 전자소송, 부동산등기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 출입국관리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법제도와 시스템 전수

4. 구체적 정책 실행 방안

- ▣ **BH가 컨트롤타워**로서 ① 유관기관 참여하는 **공동 추진체 구성**, ② **사법한류 정책 표방 및 추진** ⇨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 동력으로 활용**

-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는 **쏠국가적 혁신 아젠다**로 설정
- 구체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장단기 액션 플랜 수립**

▣ 사법한류 사업 착수

- 새로운 사법인프라 구축의 **제도적 장애요인 등 제거**
- 사법한류에 대한 국내외 **다각도의 홍보 실시**
- 액션 플랜에 따른 **단계적 실행 계획 실천**

- ❖ ① 과감한 세재혜택, 규제완화를 표방하는 **국제자유경제구역 지정**, ② **국제기준 법률 제정**, ③ **각종 전문사건의 관할 집중 및 전문적 사건 처리 등**

노동 개혁을 위한 노동분쟁해결 프로세스 혁신

1. 혁신 필요성

① 노동 시장의 구조적 모순, 노사갈등의 폐해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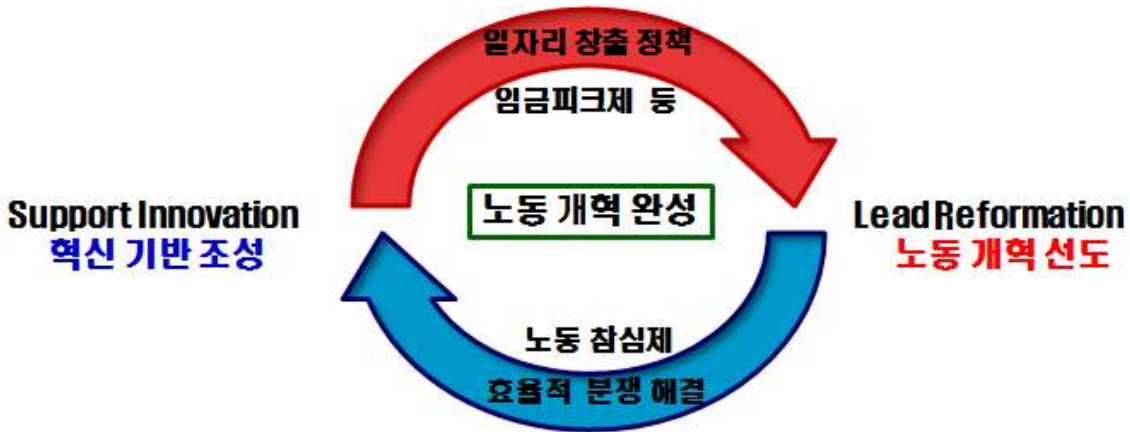
⇒ 경제도약의 발목 잡는 주된 원인

- ▶ 우리나라 사회갈등,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
- ▶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 진입 위한 마지막 장애요소



② 일자리 창출 정책 + 효율적 노동분쟁시스템 설계 ⇒ 노동 시장 전체의 인프라 강화

- ▶ 임금 피크제 등 新제도 도입 ⇒ 未知의 분쟁 이슈화 가능성 高
- ▶ 자주적·평화적 분쟁처리시스템 구축 ⇒ ①新제도의 안착, ②노동개혁 완성 견인하는 선순환구조 가동



2. 혁신 방안 ⇒ 노동분쟁 전문가참여제(참심제) 도입

■ 현 노동분쟁해결 구조의 한계 극복

-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동위원회가 개별적 노사분쟁까지 처리
- ①사실상 5심제(지노위+중노위+3심 소송)로 운영, ②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낮고, 충실한 심리도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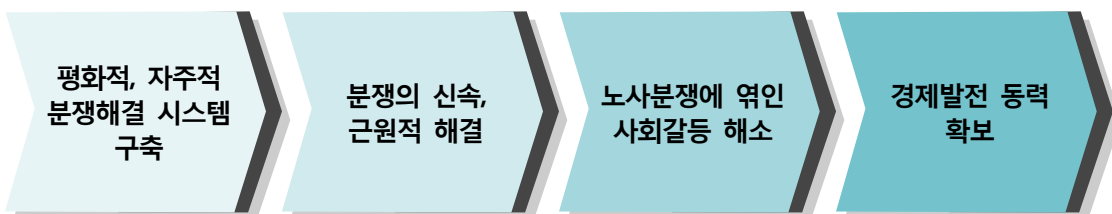
■ 일본의 노동참심제 성공 사례 벤치마킹

시행 경과	2004년 내각 주도로 제도 도입 ⇒ 2006. 4.부터 시행	개혁 배경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로 노동 분쟁 급증 ⇒ 신속성·전문성 갖 춘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구축
성과	2006. 4.~2009. 9. 동경지재 노동 심판사건 중 78% 참심제로 종국 (조정성립율 71.8%)	평가	기존 노사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획기적 변혁, 일본 사법개혁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됨

■ 한국식 노동분쟁 전문가참여제(참심제) 도입

구분	내용
노동사건 처리주체	(가칭) 노동심판위원회 ▶ 직업법관 1명, 노동심판원 2명(사용자측 1명+노동자측 1명)으로 구성 ▶ [위원회 성격] 법원연계형 독립적 분쟁처리위원회 (입법 정책 사항)
담당 사건	해고, 임금 등 개별적 근로관계 사건
신속한 분쟁해결	1회 기일 조기 지정 + 원칙적으로 3회 기일 이내 종국 처리
사건처리 프로세스	①일단 조정 시도 ⇒ ②실패 시 심판 ⇒ ③불복 시 소송으로 이행
사건 처리 방법	법리 판단에 구속되고 않고, 분쟁 실상에 적합한 결론 제시

■ 혁신의 기대효과





문제 법관에 대한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

2015. 9. 30.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승포판'의 문제 ⇨ ① 소장법관에게 악영향 & ② 사법부 경쟁력 약화

- 이른바 '출세(승진)를 포기한 판사'의 문제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음
 - 출퇴근 시간 미준수, 재판업무 불성실 수행, 배석판사에 대한 부적절 언행
- 이러한 일부 고참 법관들의 직업적 나태함은 ① 소장법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② 사법부 경쟁력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2. [총론] 대응방향

■ 승포판은 '직무윤리'의 문제 ⇨ 사법행정권 발동 필요

- 이른바 승포판이 야기하는 문제는 단순한 업무열정의 다과의 문제가 아닌 법관의 직무윤리(법관의 직무충실의무 준수)의 문제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감찰활동 등 사법행정권의 적절한 발동이 긴요함

■ 일반적 경고 메시지 v. 구체적 감찰 강화 ⇨ 구체적 감찰 강화

- 문제 법관을 밝혀내는 것은 다양한 방식의 감찰 활동 강화 등을 통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고유 업무
-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일반적'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통계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존재 ⇨ 내부 견제장치 작동 필요

- 사건처리율 등 외형적 통계 수치는 양호하게 유지하면서 기록 검토 및 판결문 작성 등 실질적인 재판업무는 등한시하는 합의부 부장판사 존재
 - 기일진행을 위한 사건메모 작성, 합의를 위한 상세한 브리핑 등 사건처리



부담이 배석판사들에게 전가되면서 배석판사의 자존감 저하 및 불만 고조

- 통계만으로는 문제 법관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문제 법관의 직무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자의 건강한 감시체계 작동 긴요

■ 문제 법관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안 마련

[1단계] 문제 법관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 ① [공식채널]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라인에 의한 감독
- ② [온라인] 상시적인 온라인 익명 제보 시스템 구축: 코트넷 '신문고' 개선
- ③ [오프라인] 법원별 고충전담법관 선정
- ④ [환경조성] 배석판사에 대한 근무평정 제도의 개선
- ⑤ [예외적인 경우] 빅 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전자적 모니터링



[2단계] 문제 법관에 대한 시그널링(Signaling)

- ① 문제 사례 교육·알림
- ②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



[3단계] 문제 법관에 대한 구체적(specific) 감독 조치

- ① 사전 경고: 주의, 구두(서면)경고
- ② 빅 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강도 높은 직무 감찰 실시
- ③ 사무분담 변경
- ④ 전보 등 인사조치
- ⑤ 징계



3. [각론: ①단계] 문제 법관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가. [공식채널] 법원장, 수석부장 등 사법행정라인에 의한 감독 강화

▣ 출퇴근 문제, 재판업무를 등한시 하는 행태 ⇨ 법원장 등의 주의, 경고

- 출퇴근 문제나 재판업무를 등한시 하는 등의 행태는 법원장, 수석부장 등 사법행정라인에 의해 쉽게 포착될 수 있음
- 법원장, 수석부장의 감독 강화 및 그에 따른 주의나 경고는 1차적으로 실효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음

나. [온라인] 상시적인 익명 제보시스템 구축 ⇨ 코트넷 신문고 개선

▣ 자율적인 내부 모니터링 장치로서 온라인 익명 제보시스템

- [목적①] 법관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 ⇨ 동료 법관들 사이의 자율적인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 작동을 통하여 법관의 직무윤리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제어 ⇨ 법관 집단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법관 집단의 품위 및 자긍심 고양
- [목적②] 문제 법관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법관 (배석판사 등)들에게 고충제언·건의 등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 실행 방안 ⇨ 코트넷 '신문고'의 개선

● 코트넷 '신문고' 현황

- 2003년경 업무 과정에서 느끼는 사소한 고충 및 소박한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코트넷에 신설
- 개설 초기를 제외하고는 법관들의 이용 실적 저조
 - ▣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 ① 실명 이용에 대한 부담감, ② 코트넷에서의 위치상 쉽게 눈에 띄지 않음, ③ '신문고'라는 명칭만으로는 그 취지 및 목적이 쉽게 파악되지 않음



<신문고 이용실적: 접수건수 기준(특정인이 복수로 이용한 경우도 포함)>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법관	10	9	6	8	0	1	1	0	0	0	0	0	0
직원	33	76	55	48	24	10	38	16	9	7	6	7	4
합계	43	85	61	56	24	11	39	16	9	7	6	7	4

● 코트넷 ‘신문고’ 개선 방안

- ① 실명 이외에 익명 이용도 가능하게 개선 ⇨ 익명 제보 기능 강화
- ② 명칭 및 코트넷에서의 위치 변경 ⇨ 목적 명확화, 이용 편의성 증대

다. [오프라인] 법원별 **고충전담법관** 선정

■ [현황] 문제 법관의 부적절한 행위로 피해를 입는 법관들이 그 고충을 토로하고, 의논할 상대가 없음

-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분 노출 및 낙인 효과에 의한 불이익 부담은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임

■ [개선방안] 각 법원별 **고충전담법관** 선정

- 신고자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접수창구가 되어야 함
 - 실제 사례를 보면, 피해 법관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부장판사, 연수원 교수, 선배인 여성 부장판사 등에게 최초로 고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음
- “고충전담법관”, “소통담당판사”와 같이 각급 법원 내 1~2인 판사에게 공식적 직함을 부여하여 활동하게 함
 -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 중에 자원하는 사람을 선임하거나 선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공식 사법행정라인이 아닌 판사들에게 보다 친숙한 자율적인 기구로 활동하게 하는 방안 검토
 - 여성법관 중에 자원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



- 고충전담법관은 **고참 배석판사** 정도의 경력이면 충분
- 고충전담법관 경험을 쌓은 판사가 **부장판사들을 상대로 강의**하도록 한다면 조직문화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전국 고충전담법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자율적으로 연구하고,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강연활동**을 하게 할 수도 있음
- **법관연수의 재판장연수 중 ‘초임합의재판장연수’, ‘초임항소심재판장연수’ 등에서 강연**할 수도 있을 것임
- 고충전담법관의 활동결과물을 통하여 **재판부 내 고충처리 매뉴얼 작성** 또는 **예규 제정**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음

라. [환경 조성] 배석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제도의 개선

- ▣ [현황] 실질적 평정권자인 부장판사에 대한 배석판사의 과도한 증속
 - ⇒ 문제 있는 부장판사에 대한 **자율적 내부 견제장치 미작동**
 - 배석판사의 근무평정에 대한 지나친 의식 ⇒ 일상생활에서는 문제 있는 부장판사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더욱 쌓이는 경향
 - 부장판사의 합의부 운영 방식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배석판사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개진을 하지 못하는 상황
 - 일부 부장판사들이 배석판사들에게 근무평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는 사례도 존재
 - 최근 소장법관들의 가장 큰 불만은 자신이 하위 10%에 분류되어 재임용 탈락 심사 대상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이라 함
 - ⇒ 즉 근무평정의 기준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임

<법관근무평정 부여 비율>

우수	보통	미흡	연임부적격
20%	70%	10%	별도 기재



- 반대로 이른바 ‘출세를 포기한 판사’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라인의 어떠한 개별적, 일반적 경고 메시지에도 커다란 태도변화 없이 계속 근무를 할 가능성이 있음

▣ [개선방안] 배석판사에 대한 **종합평정등급 부여 폐지** ⇨ 문제 있는 부장판사에 대한 **자율적 내부 견제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배석판사가 평정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 현재 법조경력 5년 미만 법관에 대하여는 종합평정등급이 부여되지 않고 있음(2009년 평정부터 개선)
- 배석판사의 경우 연차에 상관없이 종합평정등급이 부여되지 않도록 함 (서술식 평가는 존치) ⇨ 문제 있는 부장판사에 대한 배석판사들에 의한 자율적 내부 견제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마. [예외적인 경우] **빅 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전자적 모니터링**

▣ 판사들의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빅 데이터(Big data)** 활용 가능성 증대

- 판사들의 업무와 관련한 빅 데이터(Big Data)가 쌓이고 있으므로 판사들의 근무형태는 전자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함

☑ **빅 데이터(Big Data)의 개념**

- ▶ 빅 데이터(영big data)란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
- ▶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집, 분석, 표현을 그 특징으로 하는 빅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작동케 하고 **개인화된 현대 사회 구성원 마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리, 분석 가능케 하며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기술을 실현**시키기도 함
- ▶ 이같이 빅 데이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한 종류의 데이터만으로는 판사들의 근무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부



축할 수 있으나, 여러 데이터의 종합으로 판사들의 근무형태를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 판사들의 근무 형태 관련 빅 데이터의 예
 - ▶ 출퇴근 시 스크린 도어 신분증 기록, 업무 외 인터넷 사용 시간
 - ▶ 판결문 작성 투입 시간, 판결문의 개수와 분량
 - ▶ 재판 투입시간, 증인과 기일의 수, 법정 변론 진행 녹음 파일

- 이러한 빅 데이터를 축적한 후, ① 기본적으로는 사법행정 활용하고 (예를 들면 법원별 사무분담별 업무량 편차 및 과다 여부 분석, 적정 법관 수 등), ② 평균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행태를 보이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소명을 듣는 방안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
- 유연근무제 시행(특히 시차출퇴근제), 적정 법관 수 및 업무량 편차 파악 등을 위해서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전산 모니터링이 필요하기도 함

▣ 활용 방안 ⇨ 문제 법관의 근무 행태를 개별적·예외적으로 심층 점검

- [원칙적 불가] 모든 법관들을 상대로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자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법관들 내부의 반발과 동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일반적 모니터링 수단으로는 부적절
- [예외적 허용] 다양한 채널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① 법원장, 수석부장의 감독, ② 상시적인 온라인 익명 제보, ③ 법원별 고충전담법관 선정)를 통하여 문제 법관 파악 ⇨ 선별된 문제 법관의 근무 행태를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별적·예외적으로 심층 점검

4. [각론: 2단계] 문제 법관에 대한 시그널링(Signaling)

가. 문제 사례 교육·알림

▣ 회사 내 문제 사례를 연재하는 언론기사 벤치마킹

- 현재 조선일보는 “김대리의 뒷담화”라는 제목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직장 상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연재

<조선일보 “김대리의 뒷담화” 주제>

막말 K과장 탓에 이직한 J대리
임신한 직원에게 “무슨 벼슬이냐”... 과장님, 아내 임신 때도 그랬나요?
원칙 없는 팀장... 직원 생산성 값아 먹고 조직 효율성 떨어뜨려
윗사람 앞에서만 깎듯, 계산된 예의
특하면 지각 '에이스' P대리... 상사는 넘어가도 동료는 용서 못해

<조선일보 “김대리의 뒷담화” 홈페이지 화면>



- 서울신문 또한 “기업이 변해야 김대리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연재기사 게재 중

▣ **실행방안**

- 법원행정처가 각종 루트로 입수한 사례를 추상화하여 다양한 경로로 전국 법관들에게 알림 ⇨ 문제 법관에게 경각심 부여
- 소문만 있고 당사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음(Bluffing)
- 확인되지 않았으나 ‘있을 법한 사례’를 가공하여 제시할 수도 있음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 문제 사례 추상화 작업 실시



- 추상화된 문제 사례의 다양한 활용
 - 법관연수(경력별연수 등)에서 법관윤리 교육 자료로 활용
 - 법관워크숍, 직급별 판사회의·간담회에서의 토론 자료로 활용
 - 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의 Tea time 시간 때 대화 소재로 활용

나.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

▣ 문제 상황의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노하우 축적

- “문제 사례 교육·알림” ⇨ 문제 상황의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상시적인 온라인 익명 제보시스템 구축” & “법원별 고충전담법관 선정” ⇨ 문제 상황 해결 노하우 축적
- 과거 동일 주제를 다루었던 법원 내 연구반, 정책연구용역 등의 결과물을 재검토하여 문제 해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추출
- 현재 사법정책실에서 제3차 법원문화연구반 운영 중 ⇨ 논의 결과를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본 자료로 삼을 수 있음
 - 2015. 9. 21. “부장-배석 관계 중 문화 분야” 논의
 - ▣ 점심식사, 회식, 출퇴근 인사, 업무시간 중 의사연락 방법, 휴가 사용, 연간 일정 수립 등에 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논의
 - 2015. 10. 22. “부장-배석 관계 중 업무 분야” 논의 예정

▣ 제3차 법원문화연구반 현황

- ▶반장: 사법정책실장, 주무심의관: 최○○, 문○○ 심의관
- ▶반원: 판사 22명(31기부터 42기)
- ▶활동기간(예상): 2015. 7. ~ 2015. 12.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소통마당’ 운영 중 ⇨ 활동성과를 가이드라인 작성에 반영

▣ 서울중앙지법 ‘법관소통마당’ 현황

- ▶반장: 윤○ 파산수석부장판사, 간사: 김○○ 기획법관



- ▶반원: 부장판사 및 배석판사 13명(23기부터 41기까지)
- ▶활동기간(예상): 2015. 9. ~ 2015. 12.

■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

- 2014년에 배포한 바 있는 “법정진행”과 같은 감성적인 소책자 형태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관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

5. [각론: ③단계] 문제 법관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조치

가. 필요성

- 문제 법관의 경우 시그널(Signal)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태도 변화 없이 계속 근무할 가능성 존재
- 개선 없는 문제 법관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별 조치 방안 마련 필요

나. 단계별 조치 방안

① 사전 경고

- 문제 법관에 대하여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라인이 주의 촉구, 서면(구두) 경고 등의 방법으로 사전 경고
- 자기 개선의 노력이 없을 경우, 불리한 처분이 있음을 수 있음을 일반적으로 설명 ⇨ 주의 환기

② Big Data를 활용한 강도 높은 직무 감찰 실시

- 빅 데이터(Big Data)는 문제 법관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활용

③ 사무분담 변경

- 사무분담 변경 사유
 - ① 법원장 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제 법관의 직무 수행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② 근무 태만 등으로 인하여 문제 법관이 해당 사무분담을 그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원장이 문제법관의 의견



을 청취한 후 사무분담 변경 실시

- [근거]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제5호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6조(사무분담의 변경)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다.

1. 재판부의 증설 또는 폐지가 있는 때
2. 일부 재판부의 사무가 과다하여 현저히 사무분담의 균형을 잃게 된 때
3. 일부 재판부의 법관 등이 장기간에 걸쳐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사무분담 변경 예시

- [예시①] 합의부 재판장 ⇨ 단독재판장

- 기록을 보지 않은 채 배석판사들에게 사건 전반에 대해 브리핑할 것을 지시하고, 배석판사들에게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는 경우 ⇨ 합의부 재판장으로서 업무수행을 하기에 부적당 ⇨ 단독재판부로 사무분담 변경

- [예시②] 변론 단독사건 재판장 ⇨ 비변론 단독사건 재판장

- 사건처리율이 다른 재판부보다 현저하게 미달, 상습적으로 판결문 등록 지연,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 변론을 여는 단독사건의 재판장으로 서 자질 부족 ⇨ 변론을 열지 않는 단독사건 재판장으로 사무분담 변경

● 사무분담 변경에 대해 문제 법관이 이의할 경우에 대한 대책

- 사무분담 변경에 대해 문제 법관이 이의할 경우 ⇨ 판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근거: 판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직능)

① 판사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급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2. 대법원규칙의 제정이나 개정 등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
3. 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
4. 사무분담이 확정된 후 특정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의 변경. 다만, 해당 판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6. 기타 각급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각급법원의 장이 회부한 사항
7. 제4조 제3항의 경우에 판사들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 사무 분담 변경에 대하여 문제 법관이 이의할 경우에 대비하여 ① 각종 통계자료 이외에 ② 빅 데이터(Big Data) 등을 활용한 직무감찰 자료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사무분담 변경 前 문제 법관의 의견을 청취할 때, 문제 법관이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장 등이 문제 법관에게 빅 데이터(Big Data)를 제시하며 사무분담 변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여야 함

☑ 빅 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직무감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

▶ [긍정론]

- ① 해외 기업이나 국내 민간 기업에서는, 각종 전산자료를 활용한 직무감찰이 보편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사내 이메일의 내용까지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임
- ②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직무 감찰의 필요성이 제기된 문제 법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빅 데이터를 활용한 직무 감찰을 하는 것은 재판에 관한 법관의 독립과는 무관하고, **정당한 사법행정권의 범위**에 속함

▶ [부정론]

비록 문제 법관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빅 데이터를 활용한 직무 감찰 사실이 법관들에게 알려질 경우 법관들 내부에 심각한 동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 법관에 대한 설득 목적으로 빅 데이터를 활용한 직무감찰 자료를 제시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인 통계자료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함**

- 사무분담 변경에 대해 문제 법관이 계속 이의하면서 끝내 수긍하지 않을 경우에는 빅 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직무감찰 결과를 판사회회에서 공개할 수밖에 없음 ⇨ 문제 법관의 경우 판사회회에서 빅 데이터가 공개되



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서 대부분 이의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됨

- 사무분담 변경이 헌법 제106조 제1항의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무분담을 정할 권한 ⇨ **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에 속함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4조(사무분담)

- ① 각급법원(지원 포함, 이하 같다)의 재판사무 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법원의 장**이 정한다.
- ②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관 기타, 직원들 상호간의 업무부담이 공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분담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법원장 등이 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업무상 필요’(실체적 요건)**에 의하여, ②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절차적 요건)**에 따라 사무분담을 변경 ⇨ **사무분담 변경에 관한 법원장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헌법 제106조 제1항의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자세한 검토 내용은 **[별지] 참조**

④ 전보 등 인사조치

- 자기 개선 노력이 없는 문제 법관에 대하여 전보 등 인사 조치 실시
-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법관에 대한 정당한 인사 조치는 법관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헌법 제106조 제1항의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별지] “법관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등 인사조치가 헌법 제106조 제1항의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 법관에 대한 인사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인사 조치의 필요’**와 **‘전보 등 인사조치로 인하여 문제 법관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함
- 이때 ‘인사 조치의 필요’에는 **‘문제 법관에 대한 징계를 대신한 문책 목**



적'을 포함시키기 보다는, 가급적 문제 법관의 직무 태만 행위 내지 비위 행위로부터 **전보 등 인사 조치를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추출**해 내는 작업이 필요함

- [예시] 업무 태만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배석판사와 심각한 갈등을 빚은 합의부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조치의 경우 ⇨ **“소속 법원에서의 동료 법관과의 갈등으로 당분간 해당 법원에서 근무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추출
- 다만, **“직무를 태만히 한 문제 법관을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업무환경을 새롭게 하여 법관의 국민에 대한 책임 및 사명감을 일깨운다는 목적”**도 넓은 의미에서 **“전보 등 인사 조치를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문제 법관에 대한 징계를 대신한 문책 목적의 전보도 사실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보 등 인사조치로 인하여 문제 법관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보 등 인사조치의 위험성 시비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가급적 ‘정기인사’ 시점에 문제법관에 대한 인사 조치 실시
- 문제 법관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지 않은 곳으로 전보 조치

5] 징계

- 직무 태만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

▶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끝>



<별지> 법관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등 인사조치가 헌법 제106조 제1항의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

- 문제 법관에 대해 사무분담 변경을 하거나 전보 등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헌법 제106조 제1항의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여 違憲인지 여부

헌법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연혁적 검토] 헌법 개정 내역

- '불리한 처분'은 헌법개정의 핵심이 아니었음
 - 헌법 개정의 핵심은 '징계처분으로 법관을 파면할 수 있는지' 여부였음
 - 허용(1948년) ⇨ 불허(1962년) ⇨ 허용(1972년) ⇨ 불허(1980년, 현행)
- 헌법개정 내역 검토만으로는 '불리한 처분'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음
 - 1962년 헌법에서 "불리한 처분"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으나, 역대 헌법 개정 자료에서 "불리한 처분"의 의미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1948년 헌법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1962년 헌법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972년 헌법	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980년 헌법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987년 헌법 (현행 헌법)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3. [판례 검토]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판결례

- 대법원은 헌법 제106조 제1항을 법관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는 규정(법관에 대한 고도의 신분보장)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위 조항의 ‘불리한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는 판시한 적이 없음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추127 판결 (정○○ 부장판사 사건)**

▶ 법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중책을 부여받은 자로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고 어떠한 인적, 물적 세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헌법과 법률은 법관의 역할과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자격과 임기, 정년을 보장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3항, 제105조, 제106조 제1항). 이와 같은 **법관에 대한 고도의 신분보장**과 직무상의 독립은 법관에게 위임된 사법권 행사의 중대성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2. 21. 자 2007무152 결정 (정○○ 부장판사 사건)**

▶ 헌법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7조 제2항), 법관에 대하여는 **제106조 제1항**에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특별히 규정하여 **법관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례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6조 제1항을 법관의 신분을 일반 공무원보다 강하게 보장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불리한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는 판시한 적이 없음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1헌가2 결정 (해직공무원 보상 관련)**

▶ 모든 공무원의 신분은 헌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고, **법관도 공무원이므로 당연히 그 신분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헌법이 별도의 규정(제106조)을 두어 특별히 가중 보장하고 있는 것은, 법관은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그 신분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



- 보면 법관도 공무원이고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규정은 법관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이치이므로 **헌법이 법관에 대하여 따로 신분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가중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연혁적으로 보면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규정이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며 법관에 대하여서는 제헌헌법(제80조)때부터 헌법이 직접적으로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 ▶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 즉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할 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수단으로서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신분보장은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로서 정당한 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법관의 파면이나 면직 처분 내지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 ▶ 법관이 다른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에 의하여 함부로 그 지위가 박탈될 수 있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법관은 행정부의 압력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며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예속하게 되어 소신 있는 재판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의 신분보장**은 그의 직무인 재판상의 독립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조건으로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 모든 직업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시비선악을 가리는 판관인 **법관은 더욱 두텁게 그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헌법이 법관에 대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신분보장규정과 는 별도로 제헌 헌법 당시부터 그 신분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34 결정 (정○○ 부장판사 사건)**

▶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관에 대하여 파면을 제한하여 재판의 독립에 필수적인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법관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 등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다만, **변○○ 前 헌법재판관은 방○○ 前 판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보장상의 불리한 처분에는 법관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사건의 개요] 방○○ 前 판사는 경향교류원칙에 따라 1991. 2. 11. 목포지
원 판사로 발령되어 근무하던 중, 재경지역 법원으로서의 복귀 발령을 위한
정기인사를 6개월 앞둔 1992. 8. 광주지방법원으로 전보되었고, 그 뒤 시행
된 1993. 3. 2.자 및 같은 해 1993. 9. 1.자 법관인사에서 다른 법관들과는
달리 서울 지역으로의 복귀에서 제외되었음 ⇨ 법관의 인사를 징계 내지
문책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법
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 [다수의견] 대법원장의 인사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
적법 하므로 각하
- [재판관 한○○, 김○○의 반대의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가 곤
란하므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여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위
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음
- [재판관 변○○의 반대의견] 대법원장의 인사처분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
과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이념에 반하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서 위헌이라고 판단
 - 다만, 변○○ 前 헌법재판관은 “헌법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보
장상의 불리한 처분에는 법관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처분도 당연히 포
함된다”고 하면서도, “**객관적인 합리적 이유 없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
는 인사처분은 **법관인사권의 남용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 이를 반대
해석하면, “**객관적인 합리적 이유 있는**” 인사처분은 본인의 의사에 반
하더라도 **법관인사권의 남용이 아니고, 헌법 제106조의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야 함

☑ 헌법재판소 1993.12.23. 선고 92헌마247 결정 변○○ 재판관 반대의견

▶ **전보발령이 유리한 인사나 불리한 인사냐의 여부**는 전보발령된 법관의 의사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아무리 인사권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합리적 이유**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근무지를 이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106조**



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보장상의 “불리한 처분”에는 법관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경우 객관적 합리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피청구인에게 보낸 질의서 사건이나 경찰관 고발사건으로 인하여 잘못 보여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목포지원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전보발령되었다면 이는 분명히 불리한 인사처분으로서 **피청구인의 법관인사권 남용이며 헌법 제106조에 의하여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권 침해이다.** 더구나 그 뒤에 시행된 1993. 3. 2.자 및 1993. 9. 1.자 법관 정기인사에서 지방의 경향교류대상 법관들이 예외 없이 소정임기를 마치고 서울지역에 각 법원으로 복귀발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청구인만이 그 인사에서 제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은 바로 목포지원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서의 1992. 8. 21.자 전보발령이 **변칙적인 징계 내지는 문책수단의 인사처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이며 이는 **인사권을 법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남용하여 법관의 정당한 주장이나 권리행사를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인 처사로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유사 영역] 근로자, 공무원에 대한 전보 등 관련 대법원 판례

▣ 근로기준법상 전보에 관한 대법원 판례

● 전보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3단계 구조

- ①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음
- ② 그러나,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보처분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가짐
- ③ 정당한 전보처분인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함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¹⁾**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

1) 현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등 참조)

■ 국가공무원법상 전보에 관한 대법원 판례

●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정당함

- 대통령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인 원고를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한 인사발령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대법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 근로기준법상 전보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6350 판결 (권○○ 前 검사장 사건)

▶ 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직무능력, 인격을 갖추어야 요구되고 있고, **임용권자는 그에 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보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사를 어느 지위에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그것이 명백한 법규위반이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서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직위해제 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

- 직위해제 처분은 보직의 해제로서, 징벌을 목적으로 하는 징계처분과는 구별되나, **인사상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



⇒ ‘불이익처분’의 개념을 통상의 문언의 범위 내에서 파악

☑ 대법원 1992.07.28. 선고 91다30729 판결

▶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위해제**는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 등에 있어서(인사규정 제24조 제1항) 특별한 사전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이고(인사규정 제25조 제1항, 제2항), **징계**는 직원이 중요규칙을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피고 공사의 위신과 체면을 크게 손상시킨 경우,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공사에 큰 손실을 끼친 경우에(인사규정 제45조) 소정의 징계절차(인사규정 제48조)를 거쳐 과하여지는 **징벌**(인사규정 제46조)이라는 점에서 양자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위와 같이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승급, 승호,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되고(인사규정 제17조의 2 제1호, 제17조의 3 제1항, 제20조 제2호, 보수규정 제13조),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기초로 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으므로(인사규정 제29조 제7, 8호) 직위해제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점은 직위해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 제4조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는 달리 불이익처분이 아니라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5. 헌법 제106조 제1항의 ‘불이익 처분’의 의미에 대한 검토

가. 상정 가능한 견해

☐ [1설] 법관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전보를 불리한 처분으로 보는 견해

☑ 윤리감사관실의 의견

기본적으로 **1설**이 옳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2설**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

-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불리한 처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사에 반하는 전보**는 그 문언 상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특정직 공무원인 법관 또한 의사에 반하는 전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법원공무원규칙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의 제3장의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장 소청의 규정**은 **특정직공무원**에게, 제2장 제8절 대행근무, 시간제근무 및 휴직, 제4장 징계 및 제6장 고충처리의 규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각 **적용**한다.

- 비교법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상당수의 선진국은 법관이 임명되면 헌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는 헌법에서 동의 없는 법관의 전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 법관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허용 시 인사권자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관의 인적독립 강화를 위하여 법관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전보를 제한할 당위성이 있음

▣ **[2설] 재량권 일탈·남용한 전보만을 불리한 처분으로 보는 견해**

- 경력법관제와 전국적인 전보인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인사제도 하에서는 의사에 반하는 전보라고 하여 이를 모두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면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음

▣ **[3설] 모든 전보를 불리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견해**

☑ **인사총괄심의관실의 의견**

기본적으로 **3설**이 옳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2설**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



- 헌법에서 법관의 전보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독일,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헌법상 명시적 근거가 없고, 헌법 개정 경과에 의하더라도 전보를 불리한 처분으로 불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으로 법관의 전보를 불리한 처분에 포함시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전보의 남용이라면 재량일탈·남용으로 위법의 문제가 있을 뿐 위헌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위법의 문제와 위헌의 문제를 구별

나. 검토 의견: [2설]

▣ [1설]에 대한 검토 ⇨ 헌법 개정 당시의 헌법 현실에 반하여 채택 불가

- 법관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전보를 불리한 처분으로 보는 견해는 헌법 제106조 제1항의 문리적 해석에는 부합함
- 그러나 위 견해는 ‘불리한 처분’이라는 용어가 헌법에 도입될 당시의 헌법 현실에 반함
 - 헌법 제106조 제1항의 ‘불리한 처분’이라는 용어는 1962. 12. 26. 헌법 개정 당시 처음 도입되었는데, 당시 시행되던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판사의 임명, 보직을 함에는 대법원판사와 관계고등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여 판사의 보직을 정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였고, 판사의 보직에 관한 대법원장의 권한은 헌법 개정 전후로 본질적으로 변경된 적이 없음
 - 또한, 우리나라는 헌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경력법관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바,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법관에 대한 대규모 인사 조치를 해 왔고, 이때 법관의 희망은 인사 조치에 있어서 하나의 고려 요소에 불과하여, 법관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처분도 널리 실시되어음
- 따라서 ‘대법원장의 법관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는 헌법 제106조 제1항의 불리한 처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함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

①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 법관인사규칙

제9조(판사의 전보)

판사의 전보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실시한다.

■ [3설]에 대한 검토 ⇨ 문언 해석에 반하여 채택 불가

- 모든 전보를 불리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견해는 법관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헌법 제106조 제1항의 취지 및 문언 해석에 반함
 -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문언상 “법관에 대한 파면은 징계절차에 의하여도 허용되지 않고, 법관에 대한 일체의 불리한 처분은 징계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하다”고 해석됨
 - ‘불리한 처분’이라는 용어가 헌법에 도입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법관에 대한 대규모 인사 조치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헌법현실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해석에 의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인사 조치”까지 헌법 제106조 제1항이 정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 결론 ⇨ [2설]

-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법관에 대한 정당한 인사 조치는 법관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헌법 제106조 제1항의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법관에 대한 인사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인사 조치의 필요’와 ‘전보 등 인사조치로 인하여 문제 법관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함
- 이때 ‘인사 조치의 필요’에는 ‘문제 법관에 대한 징계를 대신한 문책 목적’을 포함시키기 보다는, 가급적 문제 법관의 직무 태만 행위 내지 비위 행위로부터 전보 등 인사 조치를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추출해 내는 작업이 필요함



- [예시] 업무 태만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배석판사와 심각한 갈등을 빚은 합의부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조치의 경우 ⇨ “소속 법원에서의 동료 법관과의 갈등으로 당분간 해당 법원에서 근무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추출
- 다만, “직무를 태만히 한 문제 법관을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업무환경을 새롭게 하여 법관의 국민에 대한 책임 및 사명감을 일깨운다는 목적”도 넓은 의미에서 “전보 등 인사 조치를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문제 법관에 대한 징계를 대신한 문책 목적의 전보도 사실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보 등 인사조치로 인하여 문제 법관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보 등 인사조치의 위헌성 시비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가급적 ‘정기인사’ 시점에 문제법관에 대한 인사 조치 실시
- 문제 법관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지 않은 곳으로의 전보 조치 [끝]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

1. 제소 필요성

- ◆ **현황** : 통진당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현재가 의원직 상실결정을 하지 않았고,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각 지역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퇴직을 통보함 ⇒ 이에 지역구 지방의원(총 31명 - 별지 참조)은 현재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비 등을 지급받고, 지방의회 사무실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음
- ◆ **법리적 필요성**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 이탈 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해산’은 자진해산만을 의미함.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은 통진당과 같이 소속 정당이 강제해산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는 것임 ⇒ 지역구 지방의원도 소속 정당이 강제해산되면 그 본질적 효과로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결정이 없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당연퇴직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의정활동의 중단 및 각종 지원의 중단 조치가 필요함
- ◆ **현실적 필요성** : 아래와 같이 통진당 인사들의 정치조직이 잇따라 결성되고 있고,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진보진영 원로들이 ‘민주주의 국민행동’(민주행동)을 발족함으로써, ‘통진당의 우회적 재창당’ 여부에 관심이 쏠림 (2015. 6. 10.자 문화일보 보도) ⇒ 재창당 움직임의 사전억제가 필요함
 - 2015. 3. 31. ‘민주와 노동’ 결성 ⇨ 김○○ 전 울산동구청장 등 주축
 - 2015. 4. 29. 경남 민주행동 결성, 2015. 5. 27. 창원 민주행동 결성
 - 2015. 6. 10. 민주행동 창립총회
 - 공동대표 : 함○○(신부), 이○○(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

장), 김○○(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전 국회의원), 한○○(민주노총 위원장), 김○○(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 강○○ 전 경남부지사 등 통진당 인사들도 참여

- ◆ 결론 : 해당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중단시키고 각종 지원 등을 하지 않는 한편, 재창당 움직임을 사전에 억제할 필요 ⇒ 아래의 제소방법이 적절함

2. 구체적인 제소 방법

- ◆ 소송의 종류 : 공법상 당사자 소송(지방의회의원지위 부존재확인소송)
- ◆ 원고 : 해당 지방자치단체(예, 경상남도 △△시)
- ◆ 피고 : 해당 지역구 지방의원
- ◆ 청구취지 : ○○○은 경상남도 △△시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청구이유

□ 확인의 이익(본안 전 요건)

- ○○○은 현재의 정당해산결정으로 소속정당이 강제해산되면 시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세비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시의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받고 계속 요구도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법률적 지위 불안
- 시의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음

□ 청구이유 주장 개요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 이탈시 퇴직한다는 취지의 규정)의 '해산'은 자진해산만을 의미함
- 따라서 소속 정당이 강제해산 된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현재의 별도의 의

원직 상실선고가 없어도 위 규정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퇴직함

- 지역구 지방의원도 헌법상 정당해산제도 및 방어적 민주주의의 취지, 정당 기속성 등에 있어서 비례대표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의 유추적용이 가능하므로, 현재의 별도 의원직 상실선고가 없어도 통진당 강제해산결정에 따른 위 공선법 규정의 당연한 효력으로 의원직 상실하였음

끝

별지

◆ 통진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 31명 — 자치단체별 정리

통진당 의원명	소속 광역단체	소속 기초단체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소속 정당
노정현	부산광역시	연제구	이위준	새누리당
이대행	광주광역시	서구	임우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태진				
김은아				
배진하		남구	최영호	새정치민주연합
고영봉		북구	송광운	새정치민주연합
소재섭				
김현정				
김선미		광산구	민형배	새정치민주연합
정진아				
이효상				
조남애	울산광역시	중구	박성민	새누리당
김만현		남구	서동욱	새누리당
홍철호		동구	권명호	새누리당
이생환				
안승찬				
윤치용		북구	박천동	새누리당
강진희				
김민식				
안소희		경기도	파주시	이재홍
김상봉	충청북도	진천군	유영훈	새정치민주연합
유영갑	전라남도	순천시	조충훈	무소속
이복남				
백성호		광양시	정현복	무소속
윤석현		화순군	구충곤	새정치민주연합
강영희	경상남도	창원시	안상수	새누리당
정영주				
김석규				
송순호		진주시	이창희	새누리당
류재수				
김주석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

1. 제소 필요성

- ◆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의원직 상실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근거로 퇴직을 통보하였음
- ◆ 의원직 상실은 소속정당 해산의 본질적 효과로서 헌법재판소의 상실결정이 없더라도 정당해산의 당연한 결과임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구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고, 지방의회 사무실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음
- ◆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중단시키고 각종 지원 등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음

2. 구체적인 제소 방법

- ◆ 소송의 종류 : 공법상 당사자 소송(지방의원지위 부존재확인소송)
- ◆ 원고 : 해당 지방자치단체(예, 경상남도 △△△시)
- ◆ 피고 : 해당 지역구 지방의원
- ◆ 청구취지 : 000는 경상남도 △△△시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청구이유

□ 확인의 이익(본안 전 요건)

- 000는 현재의 정당해산결정으로 시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수당을 지급을 구하고 있으며 시의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받고 또 계속 요구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법률적 지위 불안

- 시의원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음

□ 청구이유 주장 1 개요

-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결정의 당연한 효과 ⇨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선고가 없었더라도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결정의 당연한 효과이므로 지역구 지방의원도 의원지위상실(현재는 법무부가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의원직 상실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상실을 선고하였을 뿐임)
- 근거 ⇨ 정당해산제도 및 방어적 민주주의의 취지, 의원의 정당 기속성,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 차원
-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이와 유사함

□ 청구이유 주장 2 개요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할 경우 퇴직된다는 취지의 규정)의 '해산'은 자진해산만을 의미함
- 따라서 소속 정당이 강제해산 된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위 규정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퇴직되고(현재의 별도 상실선고 불필요), 지역구 지방의원 역시 헌법상 정당해산제도 및 방어적 민주주의의 취지, 정당 기속성 등에 있어서 비례대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따라서 현재의 상실선고가 없었더라도 통진당 강제해산결정에 따른 위 공선법 규정의 당연한 효력으로 의원직 상실하였음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상대 제소

1. 제소 필요성

- ◆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현재가 의원직 상실결정하지 않았지만,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선관위가 공선법 규정을 근거로 퇴직을 통보하였음
-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을 이유로 사유로 당적 이탈 시 퇴직하지 않고, 그 밖의 사유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산’은 자진해산만을 의미하므로, 통합진보당과 같이 강제해산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는 것임.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행정직 성격이 강하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면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역시 강제해산으로 당연 퇴직
- ◆ 현재 지역구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비 등을 지급받고, 지방의회 사무실 등 각종 편의지원을 제공받고 있는데, 이는 부당함
- ◆ 통진당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정치조직이 잇따라 결성되고 있고,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진보진영 원로들이 ‘민주주의 국민행동’(민주행동) 발족 ⇨ 통진당 재창당 여부에 관심 쏠림(2015. 6. 10.자 문화일보 보도)
 - 2015. 3. 31. ‘민주와 노동’ 결성 ⇨ 김○○ 전 울산동구청장 등 주축
 - 2015. 4. 29. 경남 민주행동 결성, 2015. 5. 27. 창원민주행동 결성,
 - 2015. 6. 10. 민주행동 창립 총회
 - 공동대표 : 함○○(신부), 이○○(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전 국회의원), 한○○(민주노총 위원장), 김○○(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 강○○ 전 경남부지사 등 통진당 인사들도 참여

◆ 해당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중단시키고 각종 지원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창당 움직임 사전 억제 필요

◆ 지역구 지방의원 의정활동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의 제소방법이 적절함

2. 구체적인 제소 방법

◆ 소송의 종류 : 공법상 당사자 소송(지방의원지위 부존재확인소송)

◆ 원고 : 해당 지방자치단체(경남 000시)

◆ 피고 : 해당 지역구 지방의원

◆ 청구취지 : 000는 경남 00시 시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청구이유

□ 확인의 이익(본안 전 요건)

○ 000는 현재의 정당해산결정으로 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여전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세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며 시의원에게 대한 자치단체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받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법률적 지위 불안

○ 시의원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음

□ 청구이유 주장 개요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 이탈시 퇴직하고, 그 외의 사유로 당적 이탈할 경우 퇴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의 ‘해산’은 자진해산만을 의미함

○ 따라서 소속 정당이 강제해산 된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위 규정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퇴직되고(현재의 별도 상실신고 불필요), 지역구 지방의원은

행정직 성격이 강한 점, 헌법상 정당해산제도 및 방어적 민주주의의 취지, 정당 기속성 등에 있어서 비례대표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 유추적용 가능하므로, 현재의 별도 의원직 상실선고가 없었더라도 통진당 강제해산결정에 따른 위 공선법 규정의 당연한 효력으로 의원직 상실하였음

별지

◆ 지방의원 자치단체별 정리

통진당 의원명	소속 광역단체	소속 기초단체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소속 정당
노정현	부산광역시	연제구	이위준	새누리당
이대행	광주광역시	서구	임우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태진				
김은아		남구	최영호	새정치민주연합
배진하				
고영봉		북구	송광운	새정치민주연합
소재섭				
김현정				
김선미		광산구	민형배	새정치민주연합
정진아				
이효상	울산광역시	중구	박성민	새누리당
조남애		남구	서동욱	새누리당
김만현		동구	권명호	새누리당
홍철호				
이생환		북구	박천동	새누리당
안승찬				
윤치용				
강진희		울주군	신창열	새누리당
김민식				
안소희	경기도	파주시	이재홍	새누리당
김상봉	충청북도	진천군	유영훈	새정치민주연합
유영갑	전라남도	순천시	조충훈	무소속
이복남				
백성호		광양시	정현복	무소속
윤석현		화순군	구충곤	새정치민주연합
강영희	경상남도	창원시	안상수	새누리당
정영주				
김석규				
송순호		진주시	이창희	새누리당
류재수				
김주석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6. 3.

법원 행정처



< 요약 >

1.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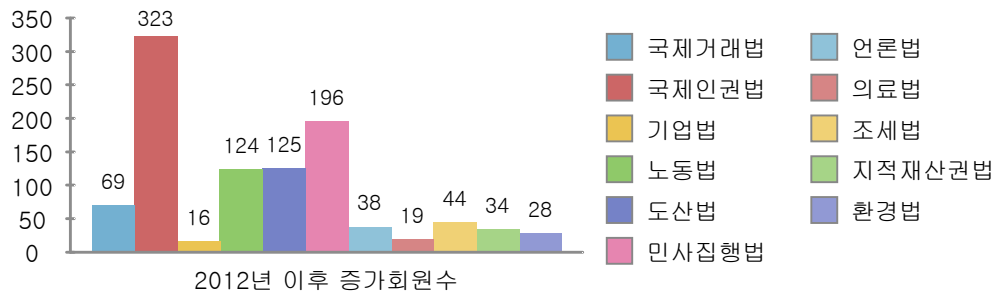
가. 전문분야연구회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점검 필요

- 2000년 이후 15년 이상 근본적 변화 없이 유지 ⇨ 법관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기에 미흡
- 연구분야 주제는 물론 연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필요

나. 특정 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및 활동 현황

- 회원 431명으로 중복가입 허용되는 연구회를 제외한 전체 11개 연구회 중 3번째로 큰 규모 ⇨ 곧 도산법을 제치고 2위 등급 유력
- 2011. 8. 설립 이래 가장 압도적인 회원 증가세



- 2016년 들어 2개월 여 만에 40개가 넘는 본글과 수백개의 댓글 달림 ⇨ 다른 커뮤니티의 전반적 침체 추세와 대비(최대규모 인사집행법도 토론장 및 QnA 게시글이 1년간 7건 정도인 것과 대비)
- 법관 전세대의 가입 및 활동 활발 ⇨ 사무분담과 무관한 가입이라는 점에서 젊은 법관들 참여 높고, 다른 연구회의 노령화와의 대비
- 외형적 급속·과잉 성장과정에서 드러난 전문분야연구회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필요 ⇨ 주제의 보편성으로 인한 이슈 선점 등 포함
- 연구회 주도 세력의 편향성 및 영향력 증대로 인한 대책 마련 필요
 -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전문분야연구회 본질을 벗어난 활동

다. 종합대책 마련 필요 ⇨ ①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의 시스템 점검 및 개선이라는 큰 틀의 대책 + ② 특정 연구회 과잉 성장 관련 위험방지 정무적 대책 필요

2. 연혁 및 현황 분석

- 연구회 및 관련 규정 연혁 개관 ⇨ 2006년 예규개정 이후 사실상 방치



- **예산 현황** ⇨ 최근 7년 이상 1억원 수준 동결
- **최근의 개선방안 논의 : 2012. 기초실의 '전문분야연구회 운영방식 개선 검토'** ⇨ 시행되지 않음
 - 설립허가규정 폐지, 운영 관련 규정 전면 삭제, 상시 예산 지원 등
-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수 추이 및 예산 지원 현황**
 - 최근 수년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가파른 성장, 두 번째는 젠더법연구회 (2015년에는 노동법연구회도 회원 수 급증)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급증 원인 분석**
 - ① **전문분야 주제의 보편·포괄성 및 상징성** ⇨ 난민 등 국제적 이슈가 아니라 일반적 인권 관련 전반을 다룸 ⇨ '인권'의 흡입력 극대화
 - ② **핵심그룹의 적극적 확장 활동** ⇨ 창립 멤버(우리법연구회 출신 다수, 정황상 설립 배경 의문)들이 여전히 활동 주도
 - ③ **회장 경선 등 자유롭고 개성있는 문화** ⇨ 고등부장과 평판사가 치열하게 경선을 치르는 등 구성원들의 애착과 자부심 + 연구와 무관한 공연관람 및 친목활동으로 연구회라기보다 법관 교류 모임 성격
 - ④ **사조적 특성 유지** ⇨ 선배의 찬조금 출연 당연시되는 등 인적 결합체로서의 분위기(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핵심그룹의 문화 반영)
 - ⑤ 기타 ⇨ 지역별 친목모임, 운영위원 및 팀장제 등은 우리법연구회의 시스템이 그대로 이식된 것임

3. 현행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 ① **일부 연구분야 주제에 대한 법관 사회의 관심 消盡**
 - 의료법·언론법·기업법 등 회원수 감소 내지 정체, 참여 저조 ⇨ 젊은 법관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 유도할 새로운 전문분야 발굴 필요
- ② **중복가입 금지규정 形骸化**
 - 공정한 예산지원 등 필요성에 의하여 정하여진 원칙임에도 사실상 커뮤니티 시삽 등에 의해 제한 없이 중복가입 이루어지고 있음
 -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중복가입 회원수도 단연 가장 많고(227명), 중복가입자 비율도 가장 높음(53%)** ⇨ 핵심그룹의 적극적 포섭활동
- ③ **한정된 예산 대비 연구회 다수로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 [현행배정방식] 예산의 50%만 활동성과 순위에 따라 배정
 - [한계①] 1억원 예산을 15개 연구회에 배분하는 결과 최대지원 1천만원, 최소지원 450만원으로 연구회 활동의 인센티브로서 효과 미흡
 - [한계②] 제한된 범위의 형식적 평가로 행정처 관리범위 이탈



- 예산 및 전산망 지원에 상응하는 행정처의 실질적 관리방안 모색 필요

■ ④ 커뮤니티 폐쇄성 등으로 연구성과 사법부 내부 공유 미흡

- [사법부 전체] 비회원의 접근성 차단 + 지식광장에는 미개시
- [연구회 회원]도 비적극회원의 열독률 저조 ⇨ 재판실무 활용 등 기여도 높지 않고, 사법부 전체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 미흡

■ ⑤ 학계·재야·언론 등 상대 연구성과 활용 및 법원 신뢰강화 기능 미미

- 사법부 전문성 외부 각인 효과 부족, 법원 우호세력 확보 성과 미미, 성과물이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지도 아니함

■ ※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관련 문제점

- ① 허가받은 전문분야 이탈·무시 ⇨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 논의영역도 이탈, 정치적 함의 포함 주제 및 연사 다수
- ② ‘인사모’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에 조직적 개입 시도 ⇨ 핵심세력이 2015. 7. 발족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통하여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쟁점들에 조직적 관여 시도
- ③ 일부 강경·핵심세력이 연구회, 나아가 사법부 전체 여론 호도

4. 구조 개편 및 대응방안

가. 개선방안 요약 ⇨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 및 인권법연구회 인기요인별로 그에 상응하는 개선책 마련

나.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에 관한 구조 개편 등 개선방안

■ (법관 사회 관심 소진 ⇨) ①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 [필요성] 특정 연구회의 이슈 독점 방지, 자기개발 욕구 해소 및 합리적 여론형성의 장 마련
 - 일부 특정 집단이 논의를 주도하는 인사모와 ‘이사야’ (인사제도 및 법원문화 관련 여론 주도)의 영향력이 비대해지기 전에 합리적 여론 분출의 장 마련 필요
- [기본방향] 젊은 법관들의 관심·수요·참여 고려, ‘주제’ 못지않게 ‘주체’의 상징성 중요함 ⇨ 젊은 법관들의 롤모델 전진 배치
- [후보 1] 사법국제화 연구회
 - ① 외국어·해외사법·국외연수에 관심 있는 법관 다수, ② ‘국제’ 관련 이슈 포괄적으로 망라·포섭·유인 가능, ③ 우호적 분위기 형성시 각종 사법행정현안에 대하여 관련 자료 수집 및 지지연론 출발점 역할 기대
 - [운영진 후보군] ① 이○○ 고법판사, ② 원○○ 지법부장 등



● [후보 2] 가칭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 연구회

- 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속 사법부 및 법관의 모습 관련 쟁점 전반
- ① 젊은 법관의 관심, ② 미디어 속 왜곡된 법관과 사법의 모습 바로잡는다는 명분이 공감대 형성, ③ 영화 및 방송 관련 이벤트로 관심 흡인력 극대화하여 단기간에 연구회 판도에 변화 유도 가능 등
- 세련된 명분 제시 중요
- [운영진 후보군] ① 문○○ 지법부장, ② 전○○ 고법판사 등

■ (중복가입 금지규정 형해화 ⇨) ② 중복가입자 정리

- [필요성] 원칙을 준수하는 법관만 여러 손해를 보고 있고, 편법적 중복가입을 혜택을 인권법연구회가 최대 향유하고 있음
- ① 법관들 상대 중복자 정리 명분 있고, ②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하며, ③ 인사모 해소를 위해 유효한 우회적 압박 카드이며, ④ 사전 준비의 부담이 없는 등의 여러 장점 있음
- 시행하면 국제인권법(431⇨204), 노동법(295⇨196) 등이 가장 위축됨
- 중복정리과정에서 인권법으로 편중되는 부작용 막기 위해 부장급 탈퇴 등 다른 방안과 동시에 실시 필요

■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 ③ 예산 증액 및 실질 평가 시스템 구축

- 예산동결 기간의 회원 및 성과 급증, 다른 부처 현황 등을 내세워 예산 당국 설득 ⇨ 증액에 따른 행정처의 예산분배 재량 확대로 연구 성과에 따른 실질적 차등지원 가능
- 평가기준 구체화·실질화하고 각급 법원 전문분야 지원비(6억원)도 활용

■ (커뮤니티 폐쇄성 ⇨) ④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 '자신들만의 동질감', '이너씨클 활동의 은밀한 만족감' 등 유발 ⇨ 학술성과 공유 마땅, 사법부 전체 역량 축적에 기여 필요
- ① 다른 전문분야 성과 접근성 강화, ②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물 사법부 전체 공유 등의 명분과 ③ 각종 성과 지식광장 게재 독려 등 오해 해소 방안 동시 활용
- ① 사법부 전문역량 강화 및 지식공유 활성화, ② 중복가입금지 엄격 시행에 따른 불만 해소, ③ 은밀한 논의의 만족감 내지 결속감 약화로 인적 유대 수단이 아닌 학술연구 수단으로 정립, ④ 인사모의 자유게시판化로 chilling 이펙트 등 다양한 기대효과

■ (외부 활동 미흡 ⇨) ⑤ 외부 교류 및 우군 확보 적극 지원

- 축적된 역량 활용, 매너리즘 탈피, 사법부 영향력 및 위상 강화 등
- [시행방안 ①] 대형 이벤트 및 출판사업 발굴 및 지원



- [시행방안 ②] 매년 정기 평가시 외부 활동 관련 항목 대폭 강화
- [시행방안 ③] 사법부 우호 인사 확보를 위한 방안 등
- ⇨ 장기적 관점에서 심층적인 추가 검토 필요

다. 특정 연구회 과잉 확장 관련 대응방안

■ (주제의 보편타당성 ⇨) ① 허가받은 전문분야 범위로 제한

- 허가받은 '국제인권'으로 한정 ⇨ 단 학문의 자유 억압 등 오해 방지
- [해결방안 ①] 회장의 리더십 발휘
 - 전문분야연구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모 등에 대한 문제제기
 - 차기 회장은 핵심세력이 나설 것이므로, 현 회장 체제에서 인사모 해결필요
- [해결방안 ②] 대안적 연구회 신설 또는 대안적 활동 지원
 - 보편적 인권 관심 국제인권법으로의 독점적 유입 방지하고 수요 흡수
 - 헌법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보편적 인권 관련 대형 이벤트 발굴·지원

■ (핵심그룹의 확장 시도, 자유로운 문화 및 사조직적 특성 등 ⇨) ② 핵심세력과 다수 회원간 분리 방안

- 인위적 개입은 성공 불가하므로, 자연스러운 문제제기 및 논란 유도
 - ① 인사모 문제, ② 신망 높은 고법부장들 다수 집단 탈퇴(명분 및 시기 조율), ③ 우리법연구회 관련성 등 막연한 논란 및 문제제기만으로도 상당수 법관으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임

■ (지역별 모임 등 친목모임 활성화 ⇨) ③ 장점을 다른 연구회에 도입

■ ④ 관심 및 활동 저조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방안 검토

- 명분 약하고,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소극

■ ⑤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방안 검토 ⇨ 자율적 연구활동에 대한 탄압 논란, 행정처가 논란의 정면에 서게 되는 부담 등에 비추어 소극

■ 인사모 관련 로드맵 예시 (사법행정위 개회 시기 중 시행 여부 문제됨)

4월 초	전정국장 명의 공지 '① 특별히 중요하고 가치있는 활동에 대하여 특별예산 지원 방안 도입 ②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 예정 (일반 법관들 피해 명분) ③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로 전환 (사법부 전체 역량 강화 등)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규정 설명하면서 연구회 목적과 무관한 소모임 해소 당부'
4월 중순	국제인권법 회장, 회원들 상대 인사모 관련 문제제기
4월 하순	사법국제화연구회 및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로 연구회 신설 다른 연구회 활동 활성화 (밴드 및 지역별 모임 등)
5월 초순	인사모 소모임이 존치 입장을 고수할 경우 ⇨ 고법부장 등 대거 탈퇴



5월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 다수 회원의 의견을 모아 인사모의 자연스러운 소멸 유도
-------	---



전문분야연구회 개선방안 검토

2018. 6. 5.

법원행정처

1. 검토 배경

가. 전문분야연구회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점검 필요

▣ 2000. 7.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정 후 15년 이상 근본적 변화 없이 유지

- 2000년 당시 법관들의 관심도, 성과 활용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설된 후 큰 변화 없이 유지 ⇨ 특히 2006년 예규개정 이후로 사실상 방치
- 현행 체제는 법관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기에 미흡함
 - 2016년 현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면, 상당수 커뮤니티의 연구분야 및 시스템은 2,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것에 불과함

▣ 연구분야 주제는 물론 연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필요

- 변화하는 시대 환경 및 젊은 법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분야를 담당할 연구회 신설 및 지원 필요
- 휴면상태 연구회 폐쇄 여부, 중복가입 연구회 정리 여부 등 연구회 운영 시스템에 관하여도 재점검과 개선 필요

나. 특정 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및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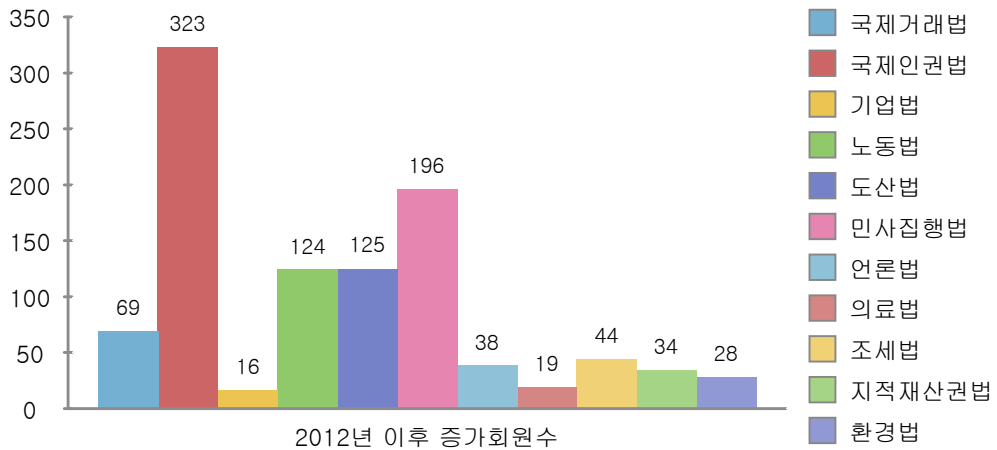
- 2016. 3. 기준 431명으로 (중복가입 허용되는 연구회를 제외한) 전체 11개 연구회 중 3번째로 큰 규모 ⇨ 곧 도산법을 제치고 2위 등극 유력



연구회	민사집행법	도산법	국제인권법	중복가입 연구회 중에서는 형사법(2,041명), 젠더법(691명)이 대규모임
회원수	875명 (법관은 635명)	449명	431명	

● 2011. 8. 설립 이래 가장 현저한 회원 증가

2012년 이후 증가 회원수



● 2016. 1. 1.이후 현재까지 **2개월** 여만에 커뮤니티에 **40여개의** 본글과 수백개의 댓글 달림 ⇨ **다른 커뮤니티의 전반적 침체 추세와 대비됨**

- 최대규모 전문분야연구회인 민사집행법 연구회의 커뮤니티 활동 감소 추세

년도	토론장 게시글 수	QnA 게시글 수
2010년	17개	46개
2015년	1개	6개

● 법관 전세대에 걸쳐 고른 가입 및 활동 활발

기간	연간 가입법관	20기 이상	21~25기	26~30기	31~35기	36~40기	41기 이하
2014년	82명	5	3	16	30	22	6
2015년	132명	1	12	15	27	60	17

- 가입회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정 기수 구간에 치우치지 않고 법관 전세대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음



- 다른 전문분야연구회도 배석판사급 경력인 법관들의 가입이 다수이나, 이는 사무분담으로 해당 분야를 맡게 됨에 따라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인권법연구회는 재판사무분담과 무관하게 개인적 관심으로 인하여 가입
 ⇨ 젊은 법관들의 관심이 다른 연구회에 비하여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 cf) 민사집행법 연구회 오프라인 활동(원외연수) 참여 법관의 노쇠화

년도	참여 법관 수	지법부장 이상 법관 수	법관경력 하위 10명의 평균 법관경력
2010년	55명	13명 (23.6%)	1.6년
2015년	48명	17명 (35.4%)	3.3년

■ **외형적 급속·과잉 성장과정에서 드러난 전문분야연구회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필요**

- ‘국제인권’ 주제의 보편성으로 인한 이슈 先占 및 확장, 편법적 중복 가입 방치 등 운영시스템 자체의 문제점 확인 및 보완책 마련 필요

■ **나아가, 연구회 주도 세력의 편향성 및 영향력 증대로 인한 위험성 관련 대응책 마련 필요**

-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 핵심세력이 자신들의 법관사회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정황 감지됨
- 전문분야연구회의 본질을 벗어난 활동에 대하여 적정한 통제 방안 및 위험성 해소 방안 긴요한 시점임

다. 종합적 대책 검토 필요

- ①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의 시스템 점검 및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의 대응방안은 물론 ② 특정 연구회 과잉 성장 관련 위험 방지를 위한 政務的 대응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
- 향후 전문분야 연구회 활성화 및 대내외 적정 활동 강화를 통해 사법부 전문성 강화, 외부 전문가들의 신뢰 강화, 예산 증액 등 법원에 기여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2. 연혁 및 현황 분석

▣ 연구회 및 관련 규정의 연혁 개관

- 2000. 7. 「전문분야연구회의구성및지원에관한예규」(이하 예규) 제정
- 2000. 8. 행정처장이 지정한 국제거래법연구회 등 11개 연구회로 시작
 - 사법정보화 연구회를 제외한 10개 연구회에 대하여는 중복가입 불허
- 2006. 2. 예규 개정으로 연구회 운영상 문제점 대폭 개선
 - 연구회 설립을 ‘행정처장의 분야 지정’ 에서 ‘법관들의 자유설립’ 으로 전환, 단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처장이 설립허가
 - 연구회의 운영성과에 관하여 행정처장 자문하기 위한 ‘연구회 성과 평가 위원회’ 신설함으로써 예산 배정의 객관성 확보
 - 전문재판부 소속 법관의 중복가입 허용 및 사법보좌관의 준회원 제도 도입
 - 연구회별로 간사의 허가를 받은 회원에 한하여 게시·열람권을 갖는 폐쇄 커뮤니티 신설 가능
- 2006. 11. 헌법연구회 신설 (중복가입 허용)
- 2007. 12. 젠더법 연구회 신설 (중복가입 허용)
- 2010. 7. 형사법연구회 신설 (중복가입 허용)
- 2010. 12. 예규 개정
 - 주요 활동이 11월과 12월에 집중됨을 고려하여 연구회의 활동성과 및 결산현황 보고시기를 매년 12. 1.에서 1. 15.로 변경
- 2011. 8. 국제인권법연구회 신설 ⇨ 현행 15개 연구회 체제 정립

▣ 예산 현황

- 2016년 예산 편성 ⇨ [210-12 복리후생비] 전문분야 실무연구회 지원비 7억 1천만 원



- 전문분야연구회 지원비로 1억 2백만 원 배정 (나머지 6억 8백만 원은 각급 법원 재판관련 전문분야 연구활동 지원비)
- 최근 7년 이상 연구회 지원비 1억 원 선에서 동결 (2012년 무렵까지는 위 지원비가 ‘전문분야 연구활동지원’ 약 6억 원과 ‘사이버연구회 활동지원’ 약 1억 원의 2가지 항목으로 편성되었던 영향도 있음)

■ 최근의 개선방안 논의

- 2012. 1. 기초실 ‘전문분야연구회 운영방식 개선 검토’ ⇨ 시행되지는 않음

☑ [주요 내용]

▶ 연구회 활동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 행정처장의 **설립허가규정 폐지**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문분야연구회가 아니어도 전산정보국장의 허가로 개설 가능)
- **운영방식에 관한 일체의 규정 삭제**(회원 자격, 가입 및 탈퇴, 임원진 구성, 총회 및 분과 등 관련 규정)
- **중복가입 금지 규정 삭제**

▶ 예산지원 관련 개선

- 연 1회 정기예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처장이 특정 연구회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 직권으로 상시 예산 지원 가능** (당시 사법정보화연구회가 법관의 SNS 사용기준에 관하여, 국제거래법연구회가 FTA에 관하여 각 연구 중 ⇨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주요 연구시 필요성 검토를 거쳐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활동지원비’에서 상시 지원)
-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 예산 배정 폐지 ⇨ 대다수인 중복가입회원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중복가입 전면 허용하면서 인원수 기준 삭제** (단 미중복 순수 회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만 예산지원 대상으로 함)
-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만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



■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수 추이 및 예산 지원 현황

연구회	회장	시샵	회원 수						예산 지원 현황(평가순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년		2015년	
									순위	배정액	순위	배정액
국제거래법	노○○	홍○○	121	121	152	162	206	221	8	550만원	7	550만원
국제인권법	이○○	김○○	11. 8. 설립		108	217	285	431	4	700만원	4	700만원
기업법	김○○	김○○	180	199	198	197	207	214	15	450만원	13	450만원
노동법	김○○	김○○	155	165	171	179	200	295	8	550만원	10	550만원
도산법	이○○	이○○	264	288	324	364	402	449	5	650만원	7	650만원
민사집행법	김○○	이 ○	560	614	679	726	773	875	2	1천만원	1	1천만원
사법정보화	허○○	박○○	300	336	355	362	380	395	8	550만원	12	550만원
언론법	고○○	남○○	88	94	102	118	127	140	12	500만원	14	500만원
의료법	이○○	노○○	236	236	272	283	294	291	12	500만원	15	500만원
젠더법	민○○	김○○	389	397	433	628	651	691	3	950만원	1	950만원
조세법	김○○	이○○	176	186	213	222	238	257	5	650만원	6	650만원
지적재산권법	이○○	이○○	319	319	340	356	358	374	5	650만원	5	650만원
헌법	장○○	김○○	165	184	199	213	220	269	12	500만원	11	500만원
형사법	임○○	이○○	235	519	825	1,294	1,683	2,041	1	1250만원	3	1250만원
환경법	배○○	이○○	182	188	217	224	236	245	8	550만원	9	550만원
회원 총수 및 총지원금			2,699	3,139	3,546	4,588	5,545	6,943		1억원		1억원

※ 노란색 음영은 중복 가입 가능 연구회

※ 민사집행법 연구회는 사법보좌관 등의 준회원 포함(법관은 635명)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급증 원인 분석

● ① 전문분야 주제의 보편·포괄성 및 상징성

- “국제인권” 이 갖는 보편타당성 등이 법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옴
- 특히 “국제인권법” 으로 한정하여 설립허가를 받았음에도 **일반적 인권 관련 주제 전반을 다루고 있음** ⇨ 난민 등의 국제적 주제에 한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인권” 의 흡입력 극대화**

☑ 주제가 갖는 흡입력이 회원 가입으로 이어진 사례

- ▶ 2015. 6. 사법연수원에서 ‘인권법과 법관’ 전문분야 연수 실시
- ▶ 법관 72명이 참가, 그 중 19명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아니었으나,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연수에 자발적 참가 ⇨ 3일간의 연수 종료 후 전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

● ② 핵심그룹의 적극적 확장 활동

- 2011. 8.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 당시 멤버 31명이 여전히 연구회 각종 활동을 주도하고 있음

☑ 국제인권법 설립 배경 관련 분석

- ▶ 2011. 8. 당시 노동법연구회가 이미 170명에 달하는 법관 회원을 두고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었음 ⇨ 그럼에도 핵심그룹이 위 노동법연구회를 더 확장하는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국제인권법연구회 개설을 신청
- ▶ 이는 핵심그룹이, (학술연구의 호기심이나 필요성이 아니라) 경직된 주제를 다루게 되고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기 쉬운 노동법 분야 연구회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보편성을 지닌 새로운 연구회 창설을 통해 활동무대를 마련하려는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
- ▶ 실제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설립 초기부터 인권과 무관한 ‘사법부의 독립 및 법관론’ 등을 주된 논의 주제로 삼아왔음 (2014. 2. 법관론 소모임 개설 등)

● ③ 회장 경선 등 자유롭고 개성있는 문화

- 법관으로서 연구 활동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다른 전문분야 연구회(친목활동은 학술행사 또는 원외연수의 기회에 함께 이루어지는 정도)와 달리 **상시적으로 연구와 무관한 공연관람 및 친목활동이 이루어지고 권장되고 있음** ⇨ **전문분야 연구회라기보다 법관 교류 모임 유사의 형태로 운영**



- 회장은 단수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로 선출되는 다른 연구회와 달리 정견 발표 및 득표활동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함

☑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자유 경쟁 선거 사례

- ▶ 2013년 하반기에 있었던 2014년 회장 선거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현 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가 선거에서 낙선함
- ▶ 2015년 회장 선거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와 31기 단독판사(현 재판연구관) 등이 서로 출마의 변을 한 후 경쟁 선거를 치름
- ▶ 법원 내 다른 조직에서 찾기 어려운 **구성원의 강한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 ⇨ 연구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애착과 자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음

☑ 네이버 밴드의 활성화

- ▶ 인적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모임답게 다른 연구회와 달리 네이버 밴드를 두고 있고, 회원수도 221명에 달하는 등 활발히 운행되어 실시간 번개모임 등에 활용되고 있음

☑ 위와 같은 여러 특징에 힘입어 2015. 11. 정기총회(1박 2일)에 47명(회원 수 2배 규모인 민사집행법연구회의 원외연수 참가자수와 비슷함)이 참가하는 등 공식 모임도 활성화

● **④ 자유로움 속 私조직적 특성 유지**

- 연구회 임원진 및 부장판사들의 찬조금 출연, 그들 주도의 회식문화 등 선배로서의 역할 요구가 당연시 되는 분위기로서 인적 결합체로서의 분위기 상당함 ⇨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핵심그룹의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⑤ 기타**

- 2015년 132명에 달하는 회원이 집중 가입 ⇨ 인권편람 번역본을 회원에게 무료배포한다는 사정이 큰 영향을 미침 (양형실장 분석)
- 연구회 소속 지역별, 법원별 (친목)모임 활성화 ⇨ 다른 연구회에는 없는 현상으로 연구회 소속 법관들 사이의 동질감 등을 드러내면서 결속을 강화하는 선순환 기능
- 위와 같은 지역별 모임 시스템, 사조직적 특성 및 회장-운영위원-팀장(기획팀장 등)-지역위 등으로 이루어진 운영진 구성체계 등을 비롯한 운영방식은 우리법연구회의 시스템을 그대로 移植한 것임



3. 현행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 ① 일부 연구분야 주제에 대한 법관 사회의 관심 消盡

- [의료법연구회]의 경우 2015년 회원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의료법학회와 공동세미나를 1회 개최한 외에는 게시글이나 활동이 전혀 없었음
 - 회원의 오프라인 모임도 3년째 전혀 열리지 않고 있음
 - 서울중앙·서부·남부지법을 제외하고는 전담부 법관들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재판 자료 및 노하우 공유 기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언론법연구회]의 경우 2015년 정기총회(세미나)에 법관이 단 8명만 참석하였고, 커뮤니티 기타 대내외 활동이 침체되어 있음
- [기업법연구회]의 경우 2012, 2013년에는 회원수가 감소하는 등 최근 5년간 15명의 회원이 증가하는데 그쳤고, 현재도 커뮤니티 활동이 침체되어 있음
 - 단, 그 소모임인 법경제학모임이 정기세미나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이상의 연구회는 2015년 활동평가에서 차례로 최하위(15~13위)를 기록
- 반면 젠더법연구회, 지재법연구회 등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젊은 법관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만한 새로운 전문분야 발굴 긴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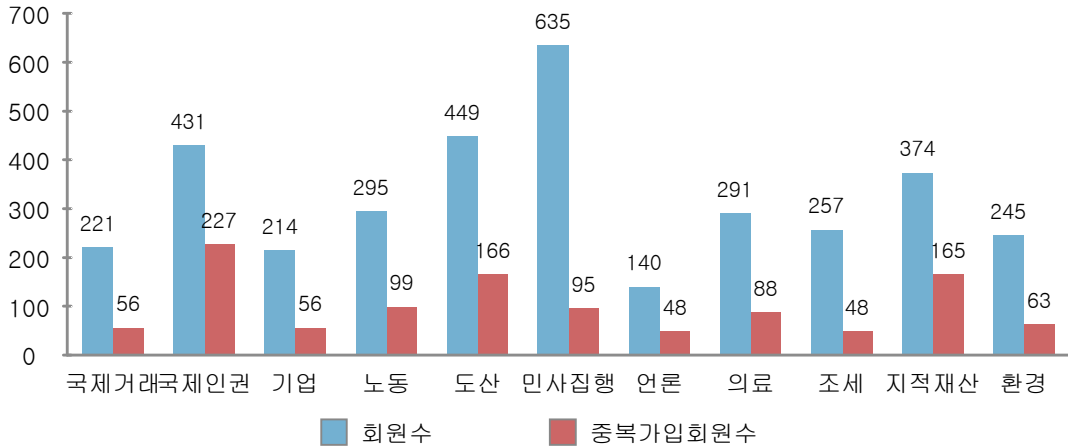
▣ ② 중복가입 금지 규정 形骸化

- 중복가입금지 규정은 ① 회원수를 고려한 공정한 예산지원, ② 허수의 회원 증대 방지, ③ 법관별로 주된 하나의 전문분야를 집중 육성할 필요성 등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정책결정한 원칙임
- 사실상 연구회 중복가입을 막을 방법이 없고, 통제가능한 코트넷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시삽이 임의로 가입을 허가하면 중복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복 가입 현황

연구회별 중복가입회원 수



- 중복가입이 허용된 연구회 제외(민사집행법연구회의 경우 사법보좌관 제외)
- 1명의 법관이 여러 연구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먼저 가입한 학회를 제외한 학회에 중복가입된 것으로 계산
-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중복가입 인원수도 가장 많고(227명), 중복가입자 비중도 가장 높음(53%) ⇨ 시습 등 핵심세력에 의한 포섭활동으로 중복가입한 법관이 많은 것으로 해석됨

▣ ③ 한정된 예산 대비 연구회 다수로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 [현행 예산배정방식] 연 2회 지원액 배정

- 상반기 배정(예산액 50%)시는 전년도 활동성과를 평가한 순위에 따라 배정
- 하반기 배정시는 활동성과와 무관하게 예산 중 25%는 일률적으로 1/n 배정, 나머지 25%는 회원수에 따라 배정

● [한계①] 1억원의 예산을 15개의 연구회에 분산 배분

- 중복허용 연구회를 제외하면 최대지원액 1천만 원(민사집행법, 875명), 최소지원액 450만 원(기업법, 214명)으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차등 지원의 취지 미약 ⇨ 연구회 활동을 자극할 인센티브로서 기대효과 미흡

● [한계②] 제한된 범위의 형식적 평가로 행정처의 관리범위 이탈



- 예산 중 50~55%를 회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한 기계적 배정
- 제한된 예산 중 45~50% 범위에서의 성과 평가(1~15위를 3개씩 5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50만원씩 차등)만으로는 실질적 평가의 동력이 부족함 ⇨ 평가위원인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도 중요 업무가 되기 어려움

- ⇨ 예산 및 전산망 지원에 상응하는 법원행정처의 실질적인 관리방안 모색 필요

■ 4 커뮤니티의 폐쇄성 등으로 연구성과 사법부 내부 공유 미흡

- [사법부 전체] 비회원은 대부분의 게시글을 볼 수 없음 + 일부 법관을 제외하고는 (커뮤니티 외) 지식광장에는 성과를 게시하지 않음
- [연구회 회원] 비적극 회원의 열독률 낮은 편임 + 커뮤니티 메일링 기능을 이용하지 않은 게시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함
- ⇨ 재판실무에의 활용을 위한 기여도 높지 않고, 사법부 전체의 전문성 향상에도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5 학계, 재야 및 언론 등 상대 연구성과 활용을 통한 법원 신뢰 강화 기능 미미

- 법원행정처가 외부 활동 강조해온 결과 대부분의 연구회에서 외부 학회와의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2014년 미 실시 연구회 : 환경법, 도산법, 기업법 (단 기업법은 외부 연사가 절반을 자치하는 심포지엄 개최)
-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음
- ①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나아가 사법부의 전문성을 외부에 각인시키는 효과 미흡함
- ② 권위있는 외부 학회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및 소통을 통해 법원의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성과는 미미한 수준임
- ③ 사법부 연구회의 출판물(정기, 비정기)이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물론 출판 예산의 제약 문제도 있음)



▣ ※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관련 문제점

● ① 허가받은 전문분야 이탈·무시

- 2015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정기세미나, 법관전문분야 연수 및 특강 개요

행사	주제	연사
1월 특강	경제민주화와 인권	정○○ 전 총리
3월 세미나	건강할 권리	김○○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5월 세미나	증세와 복지	새누리당 김○○ 의원
6월 법관연수	인권법과 법관	경향신문 이○○ 기자 등 (전○○ 대법관, 김○○ 헌법재판관)
7월 세미나	모욕죄의 남용과 한계	연구회 내 '표현의 자유' 소모임 소속 허○○, 류○○ 판사
8월 세미나	영화 빵과 장미	자유 토론
10월 특강	중동 내전과 난민 문제	경향신문 구○○ 기자
12월 학술대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한국노동법학회, 법원 노동법연구회와 공동개최

- '국제인권' 과 무관한 주제가 대부분 ⇨ 경제민주화와 인권, 증세와 복지 등은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의 논의 영역도 이탈하는 수준임

- 정치적 함의를 포함한 주제를 자주 선정하다보니 연사로도 전·현직 정치인들이나 정치색이 있는 기자 등이 다수 참여하게 됨

● ② '인사모'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 등에 조직적 개입 시도

- 연구회 핵심세력이 2015. 7.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을 발족하여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쟁점들을 인권을 핑계로 관여 시도

- 상고법원, 사법행정위원회, 판사회의 활성화,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하여 조직적 개입 시도

● ③ 일부 강경·핵심세력에 의한 연구회 및 사법부 전체 여론 호도

- [커뮤니티 내] 우리법연구회의 내부결속 강화 시스템을 모방하여 일부 핵심 세력을 중심으로 유대관계 형성

- [사법부 내] 회원 급증 및 젊은 법관들의 이목 집중 등을 통하여 법관 사회, 특히 소장 법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위상과 이미지를 얻고 있음



4. 구조 개편 및 대응방안

☑ 개선방안 요약 ⇨ <전문분야연구회의 전반적 문제점>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기요인>별로 그에 상응하는 개선책 마련

- ▶ [전반적 문제점1] 법관 사회의 관심 소진 ⇨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 젊은 법관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중견 법관이 주도
- ▶ [문제점2] 중복 가입금지 규정 형해화 ⇨ 중복가입자 일제 정리(규범력 회복)
 - 국제인권법이 가장 큰 타격 + 주제 무관 소모임 정리 등 행정처 개입 명분 제공
- ▶ [문제점3] 형식적 평가 및 예산 배정 ⇨ 예산 증액 및 실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
- ▶ [문제점4] 커뮤니티 폐쇄성 ⇨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및 공유
 - 핵심세력 위축 및 인권법 회원들만의 이너써클 의식 희석 + 실무전문성 축적
- ▶ [문제점5] 외부 상대 성과 제시 미흡 ⇨ 외부 교류 및 우군 확보 적극 지원
 - 외부 교류를 예산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음
- ▶ [인권법 급증요인1] 주제의 보편타당성 ⇨ '국제'인권으로 한정 + 대안적 연구회 신설
 - 회장의 역할이 중요 + 인권 관련 수요를 대안적 연구회에서 흡수
- ▶ [인권법 급증요인2, 3] 핵심그룹의 적극적 확장 시도, 자유로운 문화 및 사조직적 특성
 - ⇨ 핵심세력과 다수 회원간 분리, 부장급 이상 대거 탈퇴로 시그널
 - 사실상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점 부각 + 다수 법관들의 경계심 활용
- ▶ [인권법 급증요인4] 지역별 등 친목모임 활성화 ⇨ 다른 연구회도 도입 및 활성화
 - 인권법연구회만의 특징 희석
- ▶ 기타 ⇨ 활동 저조 연구회 폐쇄 여부,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여부 등

가.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에 관한 구조 개편 등 개선방안

☐ 1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 필요성

- 인권의 보편성을 내세운 특정 연구회가 법관 사회의 이슈를 독점하는 현상 방지
- 시의성 있고 법관들이 관심있어 하는 주제에 대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법관들의 자기개발 욕구 해소는 물론 선후배 법관들의 바람직한 소통 창구 개설, 합리적 여론 형성의 장 마련



☑ 이슈별 법관여론 주도 온라인공간 분석

- ▶ ① 사법정책관련 이슈 ⇨ 국제인권법커뮤니티 중 인사모 소모임
 - ▶ ② 법관인사 및 법원문화(부장과의 관계 등) 관련 이슈 ⇨ 다음 익명카페 이사야
 - ▶ ③ 양성평등 관련 이슈 ⇨ 젠더법커뮤니티
 - ▶ ④ 모성보호 및 생활정보 관련 이슈 ⇨ 네이버 여성 법관 카페 유스티티아
- ⇨ 일부 특정 집단이 논의를 주도하는 '인사모'와 '이사야'의 영향력이 비대해지기 전에 법관들의 합리적 여론 분출의 장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커뮤니티 신설 필요

● 발굴의 기본방향

- 젊은 법관들의 관심 및 수요에 부합함과 동시에 **다수 법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발굴** ⇨ 젊은 법관들의 전문분야 업무능력 및 의욕 고취, 업무 외적 관심의 다변화
- 전문분야의 '**주제**' 못지 않게 이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상징성 있는 **선배법관 필요** ⇨ 젊은 법관들에게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법관들을 각 연구회에 분산 배치, 합리적 여론 형성의 구심점 역할 기대

● [새로운 연구회 후보 1] 사법국제화 연구회

- 각국 및 국제재판소의 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추후 **연구회 인적 구성 및 활동상황 검토하여 '각국의 사법행정' 도 연구대상으로 확대**
- 각종 사법현안에 대한 해외자료 수집, 번역 및 조사, 국내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번역, 해외 소개 및 홍보 ⇨ 현행 국제규범연구반을 확대개편하는 형태
- **[참가 유인]** 현재 국제규범연구반의 경우 **장기해외연수를 준비하거나 외국어 실력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젊은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사법국제화연구회의 경우에도 설립 초기부터 행정처가 적극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젊은 법관 상당수의 관심을 끌 수 있음
- **[+]** ① 외국어 및 해외사법에 관심 많은 **젊은 법관들 상당수 참여 가능**, ② **국제인권법 회원 중 '국제' 관련 분야에 관심 있어 가입하였던 법관을 유인할 수 있음**, ③ **포괄적인 이슈를 연구 주제로 망라 가능**, ④ (인적 구성과 성향이 행정처에 우호적인 경우) **각종 사법행정현안에 대하여 관련 자료 수집 및 방어논리 개발, 지지여론 확산의 출발점 역할 기대 가능**



- [-] ① 국제규범연구반 및 외국사법제도연구반과의 통폐합 내지 차별화 문제, ② 사법행정 현안이 주된 연구대상이 되는 경우 연구 자율성 관련 오해의 소지(‘관계 연구회’ 등)가 있음, ③ 인권법 핵심세력 등 외부 세력이 적극 참여·관여할 가능성 있음
- 운영진 후보군

이름	사진	소속	경력
이 ○ ○		○○고등법원 고법판사	-해외사법관련 전문성 有, 행정처와의 의견조율 가능하고, 젊은 법관들과의 소통, 교류능력 있음
원 ○ ○		○○지방법원 부장판사	-해외사법관련 전문성 有, 행정처와의 의견조율 가능하고, 젊은 법관들과 소통, 교류 가능함

● [새로운 연구회 후보 2] 가치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 연구회

- [주된 분야] ‘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속 사법부 및 법관의 모습’ 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및 파생되는 법적 문제, 나아가 미디어가 법관 및 재판의 현실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관련 콘텐츠의 개발방안을 각 연구
- [+]젊은 법관들의 관심을 쉽게 유도할 수 있음(엔터테인먼트법 분야는 젊은 법관들이 관심을 갖는 전문분야 중 연구회 미개설된 몇 안 되는 분야 + 예산 지원을 통한 공연 관람, 예술인과의 간담회 등도 높은 호응 예상)
- [+]미디어 속 왜곡된 법관과 사법의 모습을 바로잡는다는 필요성과 명분이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법정드라마 대본 집필 등에 관심 있는 법관들의 수가 상당함 ⇨ 자발적으로 적극적 활동 유도 가능
- [+]주요 영화사·방송사·연예기획사 방문행사 등을 통해 법관 사회 화제의 중심에 서는 등으로 단기간에 현행 연구회 판도에 가시적 변화 유도 가능
- [+]장기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법원에 대한 정확하고 우호적인 정보와 인식이 제공되기 위해서는(ex: 영화 ‘12 angry men’) 위와 같은 모임 필요함



- [-] 명분을 세련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풍 81’, ‘3S 정책’ 등과 같은 愚民化 정책으로 비판받으면서 행정처가 설립의 배후로 의심받을 위험 있음
- [-] 콘텐츠의 지속적·전문적 창출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흥미 위주의 단기 이벤트로 받아들여질 우려 있음
- ※ 전문분야 연구회로 설립하는 것이 부담될 경우 코트넷 커뮤니티로 개설할 수 있음(국제규범연구회, 부모교육공동연구회 커뮤니티 등이 그러함)
- 운영진 후보군

이름	사진	소속	경력
문 ○ ○		○○지법 부장판사	-젊은 법관들 사이에 인기 및 신뢰도 높음 -2011년 친한 후배법관들을 데리고 SM을 방문하고 법정드라마 시나리오 고민하는 등 관련 분야 관심 ↑ - 어느 정도는 행정처와의 합리적 가교 역할 가능
전 ○ ○		○○고등법원 고법판사	-행정처와의 의견조율 가능하고, 젊은 법관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가 받음
오 ○ ○		○○고등법원 고법판사	-행정처 배후 지원 등의 오해 소지 없이 커뮤니티 운영가능

■ 2 중복가입자 정리

● 필요성

- ① 편법에 의한 연구회 중복가입이 난무하는 실정 ⇨ 원칙을 준수해 1개의 연구회에만 가입한 법관이 예산지원, 전문자료 접근, 전문성 있는 법관들과의 네트워크 기회 등 여러 측면에서 손해를 입게 되는 매우 부당한 결과 발생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 ② 편법적 중복가입의 혜택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가장 크게 누리고 있음 ⇨ 연구회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작업(중복가입자 정리)을 명분으로 실질적으로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장점**

▶ ① [법관들 상대로 명분 있음]

- 법관들의 학술조직인 전문분야연구회의 **활동 및 구성에 대하여 행정처가 관여할 경우 법관들의 자율성 침해, 학문의 자유 억압 등의 논란을 피할 수 없음**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경우 ① **중복가입금지규정의 규범력 회복**, ②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③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법관들의 피해 방지** 등의 명분 있음 ⇨ 규범 준수 및 편법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을 중시하는 법관들의 성향상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음

▶ ② [행정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임]

- 수백명 가입법관의 연구회 활동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방안(활동계획 사전 승인, 사후 평가 강화, 특정 연구회에 대한 제재 등)의 경우 그 성격상 행정처장 또는 차장의 공지 내지 사전 안내가 필요할 수 있음**
- 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연구회 성과 평가 위원회(위원장 기조실장)'의 '심의 강화'를 개선수단으로 삼는 경우에도 유사한 논란의 소지 있음
- 중복가입금지 해소방안의 경우 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공지 및 시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나 저항 없음 ⇨ 그 시행방안에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에 대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다른 방안에 비하여 낮음**

▶ ③ ['인사모 해소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임]

- '인사모'는 조속히 해소 내지 와해시킬 필요성이 큼
- 그러나, 행정처가 '모든 연구회는 전문분야와 무관한 소모임 활동을 정리하라'는 식으로 정공법을 택할 경우 **인사모를 표적으로 한 조치임이 쉽게 드러나고 강한 반발을 초래할 우려** 있음
- 중복회원 해소방안은 다소 기술적인 커뮤니티 정비방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전정국장이 현행 규정에 위배되는 중복회원 해소방안을 공지하면서 그 밖의 커뮤니티 관련 규정 역시 소개하고 이에 위반하는 활동을 자제하여 달라고 안내**한다면 법관 사회 반발이나 인사모측의 반발 명분을 최소화할 수 있음

▶ ④ 별다른 사전 준비 작업 없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즉시 시행할 수 있음

-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를 위하여 어느 정도 유예기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공지와 동시에 직권으로 정리할 것인지 여부 정도만 결정하면 됨

● **시행에 따른 국제인권법연구회 위축 효과**

- 한명의 법관이 가입한 여러 연구회 중 **가입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복가입으로 탈퇴처리**할 경우 연구회 회원 수 변동 내역



	현재 가입회원 수	중복가입 탈퇴처리 후 회원 수
국제거래법	221	165
국제인권법	431	204
기업법	214	158
노동법	295	196
도산법	449	283
민사집행법	875	780
언론법	140	92
의료법	291	203
조세법	257	209
지적재산권법	374	209
환경법	245	182

※ 청색표시는 가입회원이 90명 이상 감소하는 연구회

● 부작용 검토

- 중복가입 연구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법관들이 다른 연구회에서 탈퇴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선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중복가입자 정리가 오히려 소장 법관들의 인권법으로의 편중 현상 촉발할 가능성
- 중복가입 정리 외에 아래에서 검토할 ‘부장급 이상 대거 탈퇴 방안’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의 연구범위 명확화 및 인사모 해소 시도 방안’ 등과 함께 시행될 경우 법관들에게 인권법연구회가 논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줄 것이므로, 다수의 법관들이 인권법을 선택할 가능성 희박함

▣ ③ 예산 증액 및 실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

- [필요성] 전문분야연구회 지원예산이 장기간 1억원으로 동결 ⇨ 15개에 달하는 연구회에 대하여 나눠먹기식 분배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평가작업이 어려움
- 실질적으로도 외부 학술기관과의 공동세미나 등과 같은 외부활동은 현재의 예산 지원 수준으로는 시행하기 곤란하므로, 외부 활동 활성화를 위해 서도 예산 증액이 필요함



☑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 개최

- ▶ 2016. 6. 9. ~ 11. 사법연수원 소강당(250석 규모)에서 '국제 난민컨퍼런스' 개최
- ▶ **사법연수원과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 개최**
 - 사법연수원의 국제교류 예산 및 국제실의 예산을 지원받아 대규모 국제행사
- ▶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인 ○○○○ 전 호주 연방대법관을 비롯한 30여명의 외국 전문가 참석 예정
- ▶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회원 급증 가능성
 - **대규모 국제행사(언론 주목 가능성도 큼)**를 통해 소장 법관들에게 **인권법연구회의 장점과 위상을 각인시킬 가능성 매우 높음**
 - 참석 법관들에게 사법연수원 숙소 제공(법관연수동 숙소가 금요일에 비는 것 활용)하는 것 역시 일종의 특혜이자 법관들에게 인권법연구회가 법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줄 우려 있음
 - 한정된 예산을 인권법연구회가 독점하게 됨 ⇨ '난민'은 '국제인권'의 전형적인 안건이므로 연구회의 연구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지원 제한하기도 어려움

- 예산 증액으로 법원행정처의 예산분배 재량범위가 커질수록 **연구실적에 따른 실질적 차등지원이 가능**해짐 ⇨ 연구회 활동에 대하여 **기계적·형식적 평가가 아닌 실질적 평가여건 조성**

● 예산증액을 위한 예산당국 설득 방안

- 예산이 동결된 기간 동안의 **연구회 수 및 가입회원 수 급증, 누적된 연구성과 등을 내세워 예산당국 설득**
- 법무부의 전문분야 연구 지원 관련 예산 등 **타부처 예산 상황도 확인하여 증액의 논거로 삼을 필요** 있음

● 사안에 따라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활동 지원비(약 6억 원)를 활용할 필요 있음

- 기존의 **헌법연구회**가 법관 사회의 인권 관련 연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대규모 행사 개최하는 경우 예산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있음

● 실질적 평가 기준 강화

- 현행 평가기준표(아래 '외부 활동 강화' 항목 참조)의 평가항목과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필요 있음



■ 4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 필요성

- 커뮤니티 게시글이 대부분 회원 전용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법부 전체 차원의 전문역량 축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학술연구단체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공개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등의 경우 일부 회원의 사조직적 운영행태와 게시글 비공개가 맞물려 회원들에게 ‘자신들만의 동질감’ 내지 ‘일반 법관들은 알지 못하는 이너써클에서 활동한다는 은밀한 만족감’ 등을 유발하고 있음

● 시행방안

- **커뮤니티 총괄관리자인 전정국장이 언제든지** 공지를 통해 시행할 수 있음
- ① ‘법관들이 자신이 가입한 커뮤니티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의 연구성과에도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법관님들의 **전문성 강화와 자율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거나
- ② ‘사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이상 그 **연구성과를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함으로써 사법부 전체의 전문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는 정도의 명분을 제시할 수 있음
- ③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반드시 지식광장에 게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압박**’ 이라는 **일각의 의심을 희석**시키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이 부분은 전정국장이 아니라 각 법원 수석부장 등이 담당)

● [기대효과]

- ① 학술성과 공유로 사법부 전문역량 강화,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 코트넷 지식공유 활동 활성화
- ② 다른 커뮤니티에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중복가입금지 규정의 엄정한 시행에 따른 불만 내지 부작용 완화**
- ③ 인권법커뮤니티 및 노동법커뮤니티 등 **인적 유대관계 강화의 수단으로 커뮤니티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연구회의 경우** 게시글 내용 공개를 통해



자신들이 ‘은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 내지 결속감’ 을 약화시켜 활동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킬 수 있음

- ④ 특히 인사모의 경우 내부논의가 사법부 전체에 전면 공개됨으로써 인사모 내부의 논의가 코트넷 자유게시판 또는 제도개선법관토론포럼에서의 논의와 차별화되지 않게 됨 ⇨ ‘인사모의 자유게시판화’ 를 통해 과감하고 도발적인 논의는 위축될 가능성 있음
- ⑤ 커뮤니티 내부 논의 내용 공개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용이해짐 (심의원 등이 의심을 감수하며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할 필요 없음)

● 부작용 검토

- 게시글 공개시 인사모 등의 편향적 논의는 또 다른 폐쇄공간을 찾아 네이버 밴드 또는 다음 카페 등으로 도피할 가능성 큼
- 2015. 5. 우리법연구회의 상고법원 관련 세미나 사례에서 보듯 법원의 공식 연구회 내지 코트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① 훨씬 언론의 주목을 피할 수 있고, ② 공개되어 문제되는 경우에도 ‘특정 성향 일부 법관의 의견’ 에 불과하다는 방어 논리 활용 가능함

● 폐쇄 커뮤니티와의 관계

- 폐쇄 커뮤니티 근거 규정 자체를 없앨 필요는 없음
- 인사모의 경우 폐쇄 커뮤니티로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 커뮤니티 내부에서 비판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연구회장이 ‘인권을 위한 사법제도를 논의한다면서 일반회원의 접근을 막는 폐쇄적 밀실 논의의 부당함’ 을 지적함으로써 다른 일반 회원들의 지지를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⑤ 연구회 외부 활동 강화

● 필요성

- 15년간 축적된 연구성과 및 역량을 대외 관계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
- 반면 일부 연구회가 매너리즘에 빠져 새로운 주제발굴 및 연구활동이 침체된 상황에서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자극을 받을 필요도 있음
- 사법부 위상 강화 및 영향력 확대, 사법부 우군 확보와도 연결되는 과제임



● [시행방안 ①] '대형 이벤트' 발굴 및 지원

☑ 필요성

- ▶ 현재와 같이 **고만고만한 수준의 연구활동 및 외부 공동세미나 정도로는 전문 역량 과시를 통한 사법부 위상 강화의 전기를 마련하기 어려움**
- ▶ 해당 전문분야에서 **법원 전문분야연구회의 역량이 확실히 부각될 수 있는 대형 이벤트나 대형 출판사업**을 기획·실시할 필요 있음

☑ 시행방안

▶ **대형 이벤트**

- 특별세미나 외에도 **모의재판, 국제회의(ex: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국제난민컨퍼런스), 경연대회** 등 형식의 제약 없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할 필요 있음

▶ **대형 출판사업**

- **해당 분야에서 바이블로 남을 수 있는 최고수준의 서적**, 실무와 학계의 논의를 집대성한 서적, **최첨단 분야에 대한 선도적 문헌**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특별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연구회 예산(1억 원)이 아닌 각급 법원 전문분야 지원예산 기타 다른 항목에서의 **충실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행정처장이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별 사업별로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 있음**(2012년 기초실 검토서의 '상시지원' 방안 유사 제도 도입, 단 수많은 신청이 제출될 것에 대비하여 요건, 시기 및 가용예산범위 등에 관하여 **별도 상세 검토 필요**)

▶ **대법원 국제 법률 심포지엄** 활용 방안

- 매년 국제 심포지엄 예산(약 1억 7천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전년도 또는 **최근 활동이 가장 우수한 연구회 또는 가장 탁월한 심포지엄 계획서를 제출한 연구회에게 해당 연도의 국제 심포지엄 준비를 맡기는 방안도 가능**(행정처가 행사 실무지원을 하고, 대법원 주최 심포지엄으로서의 골격은 유지함)

● [시행방안 ②] 매년 정기 평가시 외부 활동 관련 항목 대폭 강화

- 현재 평가기준상 외부 활동에 대하여는 특별한 배점이 없음
- 커뮤니티의 내부 게시글 및 참여도에 대한 기본 배점이 65점에 달함
- 외부 단체와의 공동세미나 등의 외부행사를 공식 평가항목의 가점사항으로 명시하는 등의 개선 필요



현행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기준	배점(100)	
게시물 평가	토론장 및 자료실에 게시된 글과 논문 등에 대한 평가		30
	세부기준	게시물 주제의 연구 필요성	7
		게시물 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7
		게시물의 완성도	8
		실무와의 관련성, 실무에 대한 기여도	8
회원 참여도	게시물 및 게시자의 수, 조회수 등을 고려한 참여도 평가		30
	세부기준	게시물의 수 (절대 숫자)	10
		글을 게시한 회원 수 / 전체 회원 수	10
		게시물에 대한 조회수	10
세미나	세미나 개최여부 및 그 내용, 성과 등에 대한 평가		20
	세부기준	오프라인 세미나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	8
		세미나 구성의 적절성	5
		세미나 성과물의 수준	7
기타 (사이트운영, 예산 등)	자료집 등 연구성과물 산출 여부,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 연구회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 등 기타사항 평가		20
	세부기준	코트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메뉴 구성,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의 적절성	5
		자료집 등 연구성과물의 발행 여부 및 수준	5
		내년 연구회 운영계획의 적정성	5
		전년 예산 집행의 적정성	5

● [시행방안 ③] 사법부 우호 인사 확보를 위한 방안

- 매년 각 연구회별로 연구회와 관계가 돈독하거나 연구회 활동에 특별히 기여한 학자 내지 저명인사를 1명씩 추천받아 법원행정처장 주최 만찬에 초청하고 공로패를 수여하는 방안 등(원로급 석학들로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만찬도 고려 가능)
-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사법부와 유대관계 강화 효과

● 단, 외부 영향력 확대 방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심층 추가 분석·검토 필요

나. 특정 연구회 과잉 확장 관련 대응방안

▣ ① 연구회 논의 주제를 허가받은 전문분야의 범위로 제한

● 필요성

- 전문분야를 국제인권법으로 특정하여 허가받았음에도 국제적 이슈와 무관한 일반 인권론, 나아가 인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관한 활동에 집중하는 실태를 타파할 필요

- 심지어 인사모와 같이 전문분야 연구와 무관한 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음

● 유의사항

- 이 쟁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학문의 자유 억압’, ‘사법행정에 동조하지 않는 판사들 압박’ 등과 같은 자극적인 프레임에 의한 반격 예상됨
- 최대한 유화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큼

● [해결방안 ①] 연구회 회장의 리더십 발휘

- 특히 인사모에 대하여는 전문분야 연구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문제제기 충분히 가능함

☑ 반드시 현행 회장 체제에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차기 회장은 특정 성향의 핵심세력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 높음

- 최근 인권법연구회와 노동법연구회의 급성장 및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의장직 장악 시도 성공 등으로 인한 자신감, 인사모를 중심으로 한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공식 문제제기 등의 공개 행보 강화 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노동법연구회도 2015년에만 95명의 회원 급증(국제인권법과 준회원이 다수인 민사집행법을 제외하면 가장 큰 증가) ⇨ 공식적으로는 ‘전담재판부 법관의 가입을 독려하였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나, 핵심세력의 적극적 확장 노력으로 인한 것일 수 있음

- 대법관 임명제청시 ‘법원 인권법연구회장 명의 반대 성명 또는 재고 요청’ 등은 언론 입장에서 휘발성과 폭발력이 매우 강한 소재가 됨 (2017년 이○○ 대법관님 후임 임명시에는 진보적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는 나름의 명분도 있을 것임)

▶ 현 회장은 사법행정라인에 있으면서도 연구회원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음

▶ 현 회장 체제하에서 인사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차기 회장 체제하에서는 내부적 논의를 통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 ‘행정처의 전면 개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고려해야 하는 극히 부담되는 상황 발생 우려

∴ 그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필요 있음

- 부드러운 리더십 스타일의 현 회장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개설의 초심을 강조하면서 정서적으로 설득·호소할 경우 다수의 법관이 수긍·동조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임



● [해결방안 ②] 대안적 연구회 신설 또는 대안적 활동 지원

- ‘국제인권’ 이슈가 아닌 일반 인권적 이슈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회도 얼마든지 학술연구 활동 가능
- 현재 국제인권법 소속 법관들 상당수는 ‘국제인권’ 이 아닌 보편적 인권 이슈의 관심으로 가입함 ⇨ **보편적 인권 이슈에 대한 다른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은 국제인권법으로의 독점적 유입을 방지**하고, **인권 관련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음
- 대안적 연구회 신설은 다소 어려움 예상됨 ⇨ 추가 검토 필요
- 기존 연구회 중 헌법연구회(또는 형사법, 젠더법)를 중심으로 보편적 인권에 관하여 법관 사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활동 발굴하여 지원 필요 ⇨ 특별 예산 지원 가능한 대형 이벤트 발굴할 필요 있음

☑ 젠더법연구회에 대한 시각 전환 필요성

- ▶ 그간 젠더법연구회의 확장 및 발언력 강화에 대하여 조심스러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어 왔고, 젠더법연구회에 일부 強性的 법관이 있는 것도 사실임
- ▶ 그러나 근본적으로 젠더법연구회의 위상 강화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여성 법관들의 지위 강화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불가역적인 시대의 흐름일 뿐만 아니라,
- ▶ 무엇보다, 인권법연구회의 핵심그룹 등과 같이 사법행정라인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근본적인 불신과 반감을 전제로 하는 단체의 활성화가 훨씬 더 위험하고, 젠더법연구회는 여성인권 문제와 가부장적인 잔재가 남아 있는 조직문화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뿐 사법행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
- ▶ 물론 젠더법연구회의 경우 행정처와 의견조율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인권 분야의 대안적 연구회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젠더법연구회를 주요 후보로 고려함이 타당하고, 그 활동지원에 제약을 둘 필요는 없음

■ ② 핵심세력과 다수 법관간 분리 방안

● 필요성

- 핵심그룹의 활발한 활동과 그들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인하여 소수의 핵심그룹이 연구회 전체의 입장, 나아가 사법부 내의 ‘사법행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 ⇨ 개선 필요



● 시행방안

- 인위적인 개입은 성공확률도 낮고,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간접적 여건 조성의 관점에서 접근 ⇨ **무리하지 않은 수준의 문제제기 내지 논란을 통해 다수 회원의 경각심 내지 우려 일으킴**
- ① 인사모가 연구회의 설립 취지 및 관련 규정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회장의 문제제기
- ② 회원 가운데 법원의 ‘주류 중 주류’ 로 인식될 수 있는 경력의 선배법관들 다수임 ⇨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명분을 갖추어 탈퇴하도록 유도

☑ 선배 법관들의 탈퇴를 통하여 인권법연구회가 논란의 대상이라는 인식 확산

- ▶ 젊은 법관들 입장에서 탁월한 실력과 경력을 갖춘 선배법관이 다수 있어 인권법연구회의 높은 위상과 소속감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음 ⇨ 고법부장 중에서만 성○○, 이○○, 김○○, 유○○, 이○○, 이○○ 부장 등
- ▶ 명분 없이 일거에 탈퇴할 경우 행정처가 배후에 있다는 공격을 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적절한 명분을 갖추어 탈퇴하되, 대거 탈퇴할 필요가 있음 ⇨ 인사모에 대한 회장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인사모측이 존치주장을 고집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명분이 될 것임
- ▶ 종전 우리법연구회 등의 사례에서 보듯 연구회 활동에 관하여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의 확산만으로도 상당수 법관이 자연스럽게 탈퇴할 가능성이 있음

- ③ 인권법연구회가 그 시스템 및 인적 구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사정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부각될 경우 회원들의 상당한 동요 있을 것임 ⇨ 구체적 방법론은 추가 검토 필요

■ ③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장점을 다른 연구회에 도입

- 지역별 친목 소모임, 팀장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번개 모임 활성화 등은 우리법연구회의 시스템을 상당수 모방한 것으로서 회원간 유대강화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젊은 법관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음
- ⇨ 도입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다른 연구회와 커뮤니티에서도 적극 도입·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인권법연구회만의 장점 희석 + 다른 연구회 활성화



▣ 4 관심 및 활동 저조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방안 검토

- 관련 규정 ⇨ ① 연구회는 폐쇄 규정 없고, 설립허가 취소 가능, ②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장국장 또는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폐쇄 가능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2조(연구회의 설립허가)

③ 제2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 ⇨ **반대해석상 설립허가 취소 가능**

☑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0조(커뮤니티의 폐쇄)

③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운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직권으로 커뮤니티를 폐쇄**할 수 있다.

④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당해 커뮤니티 회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게시물의 이전 또는 삭제, 커뮤니티의 폐쇄, 커뮤니티 운영자 변경, 코트넷 이용권한 제한을 비롯한 코트넷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이 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관리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커뮤니티 폐쇄, 운영자 변경 또는 커뮤니티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되더라도 바로 해당 커뮤니티가 폐쇄된다고 보기 어려움

- 시행 타당성 검토 ⇨ 명분 약하고,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소극
 - ① 설립목적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가능 ⇨ 법관 사회의 강력한 반발 예상 + 취소권자인 행정처장님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부담있으므로 극히 신중할 필요(예산 제한 등을 통한 간접적 압박 검토)
 - ② 1년 이상 활동하지 않는 커뮤니티 ⇨ 직권 폐쇄 가능하나, 사전 의견진술 과정에서 향후 적극 활동 재개 의사를 밝힐 경우 신중할 필요



- ③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는 커뮤니티 등 ⇨ **코트넷 운영위원회**에서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 조치** 가능하나,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할 필요 (**행정처의 불통·권위적·관료적 이미지 악화**, 이를 경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신중 검토 필요)

▣ 5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방안 검토

- 연구회 및 커뮤니티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활동계획을 보고하게 한 뒤 승인 또는 수정요구 등 회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있음
- 검토 의견 ⇨ 소극
 - 법관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에 대한 계획 승인 또는 수정요구 등은 그 자체로 조심스럽고,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 및 탄압 논란을 피할 수 없음
 - **법원행정처가 그로 인한 논란을 정면으로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 부담이 크고, 수정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 보도 가능성도 농후함
 - 행정처(결국 대법원장님, 처장님) vs 인권법연구회 또는 진보 법관세력의 대결구도가 설정될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참고] 검토의견을 종합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및 로드맵 예시

- 인사모에 대하여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하지만, 연구회의 시스템 전반 대응방안을 제외한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함
- [선결문제] 시기적·정무적 검토 ⇨ **사법행정위원회 진행 중 연구회 관련 조치 착수 여부**
 - 현재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4. 11. 안건 제출기간 4. 20. 선정안건 발표 4. 25. 위원들 검토기간이 5. 6.까지로 각 예정되어 있음 ⇨ 위원회 정식 회기는 5. 9.부터 13일까지 1주간
 -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 강화' 로 민주적 정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축제기간에 연구회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사**



법행정위원회의 출범의의를 반감시킬 우려도 있음

- ① 새로운 연구회 발굴 및 개설에도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사법행정위원회 종료 후 실시 방안 vs. ② 인사모의 활동이 점점 강화되고 사법행정위원회 활동과정에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종료 전 조기 실시 방안**
- 이하에서는 우선 **조기 실시 방안을 전제로 로드맵을 예시**하기로 함

시기	방안 예시
4월 초	<p>전정국장 명의 공지</p> <p>'① 커뮤니티 활동 중 특별히 중요하고 가치있는 활동에 대하여 특별예산 지원 방안 도입 (본래 기초실장 명의 공지사항이나 한 번에 공지함이 효율적일 수 있음)</p> <p>②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 예정 (일반법관들 피해 명분)</p> <p>③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로 전환 (사법부 전체 역량 강화 등)</p> <p>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규정 설명하면서 연구회 목적과 무관한 소모임 해소 당부'</p>
4월 중순	<p>국제인권법 회장의 문제제기</p> <p>'인사모의 경우 연구회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데, 이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함'</p>
4월 하순	<p>① 새로운 대안적 연구회(ex. 엔터테인먼트법 연구회 및 사법국제화연구회) 발굴·신설 ⇨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이벤트 등 공지 및 활동 개시</p> <p>② 다른 기존 연구회 활동 활성화 (밴드 및 지역별 모임 등)</p>
5월 초순	<p>인사모 소모임이 존치 입장을 고수할 경우 ⇨ 고법부장 등 명망 있는 선배 법관들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대거 탈퇴</p>
5월 이후	<p>국제인권법연구회 다수 회원의 의견을 모아 인사모의 자연스러운 소멸 유도</p>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추가 검토

1. 대응방안 관련 고려 사항

▣ 문제된 당해 인터넷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의 위험성 및 대책의 시급성

- 현직 법관의 의견은 어떠한 주제에 관한 것이라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 그 주제가 법원 내부에 대한 비판이거나 정치적 주제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사법의 독립과 연결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 있음
- 최근 이○○ 부장판사의 인터넷 익명 댓글 사건의 경우 인터넷 익명 댓글 자체만으로는 법관의 글임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국에는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바, 이 사건 카페의 글은 구체적인 게시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일 뿐 현직 법관이 쓴 것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카페의 존재 자체가 알려질 경우 언론 등을 통하여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현재 이 사건 카페의 운영 형태상 유출 위험성이 높음 → 퇴직한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탈퇴된다고 하나 퇴직 전 내용을 프린트해 두는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철저히 익명으로 관리되는 이상 탈퇴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의문이 있음(탈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 등 타 직역에 있는 사람이 계속하여 사법부 내부 정보 등을 쉽게 접할 가능성 있음)

▣ 유사한 문제의 발생을 예상한 중장기적 대응방안의 필요성

- 이 사건 카페 이외에도 점차 늘어나는 다양한 소셜미디어(페이스북, 단



체 카톡방, 네이버 밴드 등)에서의 법관의 의견표명에 관한 문제는 점차 사법부의 독립과 연결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 단순 친목 차원(사법연수원 동기 모임, 대학 동기 모임 등)의 소셜미디어 활용의 경우 사석에서 한 일상 대화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텍스트로 남는’ 법관의 대화나 의견표명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 일지라도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석에서의 대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의를 요함

- 따라서 이번 기회에 유사한 문제의 발생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응방안의 마련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법관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방안

- 이 사건 카페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법관의 의견표명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과 기본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자칫 법관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음 → 종래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에서 법관들의 반발이 있었던 사례가 있음
- 따라서 법관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법관들이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하달식·타율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자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이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법관의 의견표명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익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¹⁾

▣ 법관들의 건전한 의견표명, 비판 등을 수용할 대안적 공간의 마련

- 1) 예컨대, 미국연방대법원도 사법부 구성원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하여 익명으로 이용하는 것 역시 실명과 동일하게 규제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미국연방대법원 사이트 참조), 미국에서도 익명으로 SNS에서 대화에 참여한 법관(Shirley strickland Saffold)이 징계받은 사례가 있으며, 법관에 관한 것은 아니나 ‘미국 법무부’는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social media guidelines’를 하달하면서 익명으로 글을 쓰는 경우에도 익명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음. 나아가 영국의 한 법원의 Senior presiding judge 역시 익명으로 SNS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신상정보가 밝혀지지 않는다고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음(당시 영국에서 큰 논란이 되었음)



- 법관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관이 사법부를 위한 건전한 의견표명과 비판 등을 할 아무런 통로가 없다면 이러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 있음
- 규제나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법관이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어야 진정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2. 종전 보고서상 검토된 대응방안에 대한 私見

▣ 1안(선배 법관이 운영진에게 권유하는 방안)에 대한 私見

- 기 검토 내용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클지 의문일 뿐 아니라 운영진에 대한 권유 자체만으로도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 다만, 이○○ 부장판사 사태를 계기로 이 사건 카페의 게시글이 유출될 경우 운영진 역시 직·간접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선배 법관이 주의 환기를 함으로써 자연스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2안(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에 대한 私見

- 기 검토 내용과 마찬가지로 신중함을 갖춘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활동할 선배 법관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데다가 선배 법관의 가입에 이러한 의도가 있다는 점이 혹여 알려질 경우 더 큰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3안(법관 전체에 익명글 관련 주의 공지를 하는 방안)에 대한 私見

- 현재 이○○ 부장판사의 사례로 인하여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는 행동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나, 이○○ 부장판사의 행동이 징계사유가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내·외부적으로 논란



이 있는 상황에서(대법원도 징계하지 아니하고 사직 의사를 수리하였음) 법원장님, 수석부장님이 의견을 밝히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과거 법관의 신분을 밝히고 SNS에 부적절한 글을 게시한 일로 인하여 대법원이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일선 법원의 법관이 반발한 사례가 있었는데,²⁾ 법원장님이나 수석부장님이 주의 공지를 하달하는 형식은 신중할 필요 있음

■ 4안(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私見

- 이○○ 부장판사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익명 활동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 있으나,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에 대한 과거의 논란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 대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시킬 필요가 있음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법원행정처가 주체가 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에 앞서, 사법정보화연구회에 종전에 발간된 SNS 가이드라인(법관과 SNS, 대화를 시작하다, 2012년 발간)에서 깊이 논의되지 아니하였던 익명 활동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 뒤 이를 계기로 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한다면 법관의 반발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종합 검토 방안에 대한 私見

- 이○○ 부장판사 사건 이후로 이 사건 카페의 변화 추이를 계속 관찰한 뒤 법관의 인터넷상 익명 및 실명 활동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동감함
- 다만, 현 단계에서 ‘3안’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397700>



3. 대응 방안(私見)

▣ 단기 대응 방안 : 1, 2안의 결합 및 변형

- 현재 이 사건 카페에서 법관이 민감한 현안이나 정치적 문제 등에 대하여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는 것에 대한 위협성 및 근무시간 중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스스로 자정력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그 추이를 살펴보면서 앞의 1, 2안을 결합한 다음과 같은 단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표현의 자유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큰 기본권으로서, 익명 게시판 자체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그 표현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굳이 ‘선배 법관’을 확보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법관 중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는 법관을 통하여 ‘이○○ 부장판사 사건을 통하여 법관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 역시 매우 조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도록 함(철저히 익명으로 운영되는 카페이므로 위 글을 게시하는 법관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음) → 위 글의 게시 자체로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나아가 운영진을 알고 있는 동료 및 선배 법관에게 이 사건 카페의 게시글이 유출될 경우 운영진 역시 직·간접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주의 환기를 시킬 필요 있음 → 그 경우 카페 폐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운영진 스스로 생활 정보 공유, 업무 처리 관련 노하우 공유 정도로 그 주제를 축소시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중장기 대응 방안 : 3, 4안의 결합 및 변형

- 종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SNS 사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



정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정하지 못하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법관의 독립성, 연결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법관의 SNS 사용으로 인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될 것으로 보임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앞서 사법정보화연구회를 통하여 SNS의 익명 사용 문제 대하여 자율적으로 논의하여 볼 것을 요청할 필요 있음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등이 제정되기에 앞서 법원장, 수석부장이 별도의 주의 공지를 하는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클 우려가 있는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

4. 餘論 - 법관의 건전한 의견표명, 토론을 위한 공간 마련의 문제

■ 필요성

- 이 사건 카페 개설은 법관 사이의 소통 공간, 법관의 의견 표명 공간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
- 현재 사법부에 대한 건전한 의견표명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현재 코트넷에 게시된 글이 거의 실시간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이 내부 통신망을 통하여 건전한 비판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고려할 수 있는 방안

- 외부 서버(포털사이트 등)를 활용하는 방법 : 적절하지 않음
 - 법관이 나름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공간이 외부 서버(포털사이트 등)에 존재하는 것은 보안 문제상 허용되기 어려움



● 코트넷 ‘게시판’에 법관 전용 익명게시판을 설치하는 방법 : 사실상 곤란

- 공공기관에 익명게시판을 설치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익명게시판에 조직 구성원에 대한 화합을 저해하는 글이 올라오는 경우,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오는 경우 그 후속조치에 더 난감함을 겪는 사례가 많음
- 코트넷에 익명게시판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전산 관리권이 법원행정처에 있는 이상 법관들이 이를 충분한 의견 표명의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법관만을 위한 익명게시판을 설치할 경우 직원들 역시 익명게시판을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검찰 역시 자체 개혁에 대한 검사와 검찰직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설했던 익명게시판을 2012년 한 달 시범운영 한 뒤 폐지하였음(초기에는 중수부 폐지 및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나 그 이후에는 수뇌부 퇴진 등을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고 함)³⁾

● 코트넷에 대법원장님과의 대화 배너 신설 : 검토 가능

- 익명으로 대법원장님에게 직접 건의를 할 수 있는 배너 신설 검토
-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익명게시판을 운영하는 대신, 익명으로 제도개선이나 제언 등을 직접 할 수 있는 통로를 두고 있음. 제도개선이나 제언의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하고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에 대하여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법관이 대법원장님에게 직접 건의를 할 수 있는 배너가 신설된다면 사법부가 내부 구성원 사이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

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9957>



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부담 없이 편하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일선 법원의 법관들에게 대안으로 비추어지지 않을 가능성 있음

● **코트넷 ‘커뮤니티’ 란에 ‘연수원 동기 법관 커뮤니티’ 를 설치한 뒤 게시판 등을 통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 : 검토 가능**

- 법관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면서 고충을 토로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법연수원 동기인바(관심사도 대체로 유사하므로 상호 정보 공유의 필요성도 큼), 사법연수원 동기 법관들끼리 코트넷 커뮤니티를 통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여 줌으로써 의견 표명의 분출구를 마련하여 줄 필요 있음 → 동기 법관들만 볼 수 있는 공간일 경우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동기 법관 커뮤니티의 경우 실명 사용 게시판으로도 어느 정도 법관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동기 법관 커뮤니티에 한하여 운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익명 게시판을 허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법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익명 게시판이 아니라 동기 법관 커뮤니티에서의 익명 게시판으로서 법원 내부의 민감한 사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혹 구성원 내부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명예 훼손적 게시글이 등장하는 경우 커뮤니티 운영진을 통하여(1차), 코트넷 관리자를 통하여(2차)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자정력을 유지할 수 있음
- 시범적으로 1개월 정도 운영해 본 뒤 계속 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끝>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관련 현안 검토

1. 검토 배경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직선으로 선출됨
 - 박○○ 판사(연수원 31기, 파산부 근무)
-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상반기에 출범 예정인 사법행정위원회와 시너지 효과 있을 수 있음
- 향후 발생할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의 기본 방향을 결정할 필요 있음
 - 2014년 김○○ 판사의 의장 재직 당시보다 훨씬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됨 ⇨ 진지한 대응 방향 검토 필요

2. 현황 개관

- 선거 결과
 - 재적 133인
 - 출석·투표 102인(투표율 76.7%)
 - 박○○ ⇨ 65표(득표율 63.7%), 정○○ ⇨ 35표(34.3%), 무효 ⇨ 2표
- 결과 분석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인원 분포
 - 민사단독 87인, 형사단독 22인, 파산단독 22인
 - 고려 사항
 - 박○○ 측 우호 세력
 - 파산단독(현원 23인) ⇨ 현재 박○○ 판사가 파산단독임

-
- 신청단독(현원 8인) ⇨ 주요 우호 인사들이 다수 포진
 - 정○○ 측 우호 세력
 - 민사재정단독(현원 6인) ⇨ 현재 정○○ 판사가 민사재정단독임
 - 형사단독(22인) ⇨ 행정처 심의관 출신 법관 등 주요 우호 인사들이 다수 포진

● 분석

- 우호 세력은 전체 투표율보다 다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을 것임
 - 박○○ ⇨ 약 21표 예상
 - 정○○ ⇨ 약 19표 예상
- 따라서 나머지 득표는 대부분 민사단독으로부터 이루어졌을 것임
 - 박○○ ⇨ 약 44표 예상(73.3%)
 - 정○○ ⇨ 약 16표 예상(26.7%)
- 또한 우호 세력의 투표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 기존에 형성된 생각 등에 따라 사전에 그 향방이 결정되어 있었을 것 ⇨ 결국 중앙지법 단독판사 그룹의 여론의 현재 위치는 위에서 본 나머지 득표 상황을 참고하여야 함
 - [착안점①] 표면적인 투표 결과보다 여론은 더 좋지 아니한 상황으로 추측
 - [착안점②] 제한된 상황과 정보하에 형성된 여론이고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린 결과일 수 있으므로 향후 개선의 여지는 매우 큼

3.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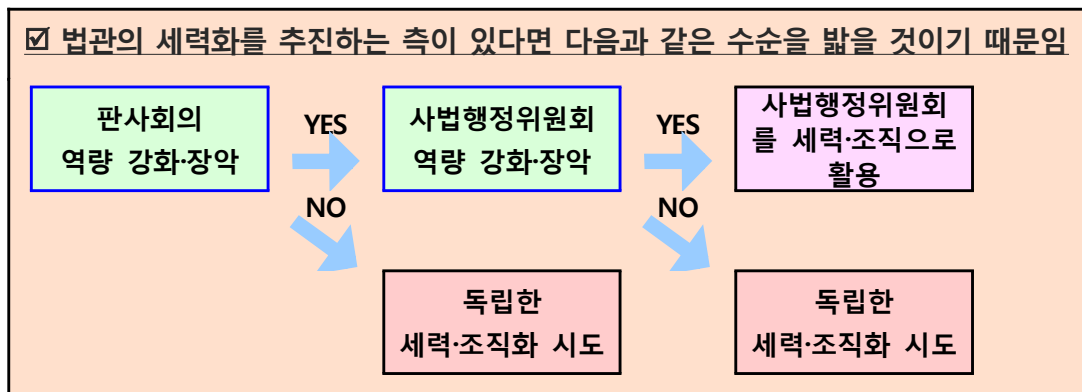
- 향후 박○○ 판사는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①단독판사 의장 직선의 연례화
 - ②사법행정위원회 구성·운영에 영향력 행사
 - ③사무분담내규 개정 건의 추진
 - ①단독판사 의장 직선의 연례화
-

- 어쩌면 박○○ 판사는 당면 현안(위 ②,③의 목표)에 더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사법행정 당국에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이 지점임

- 2014년 김○○ 판사의 의장 당선 후 2015년에는 단독판사 의장 직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서울중앙지법 기획 라인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후보를 내는 것조차 실패하였음
- 2014년의 의장 직선은 단발성·일회성 해프닝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었음 ⇨ 그러나 올해의 의장 직선으로 말미암아 이제 향후 전국 법원의 단독판사 의장 직선이 당연시될 가능성이 열렸음

- 결국 좀 더 거시적·장기적 안목에서 보았을 때 당장 올해 박○○ 판사가 당면 현안에 관하여 어떠한 성과를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체제가 상시화되고 당연시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임

- 판사회의 실질화를 통하여 법관들이 쉽게 세력화될 우려가 있음



- 이를 위하여 박○○ 판사는 일단 법관들의 관심이 많은 각종 소형 이슈에 집중할 것임

- 2014년 김○○ 판사 당시에도 4월에는 자기소개서 제출 문제를, 7월에는 통계 회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음 ⇨ 법관들의 상당한 호응을 유도
- 그밖에도 단독판사 밥조에 순회적으로 참석하여 교류하는 등 의장으로서 친분과 친밀도를 높이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적극적인 시도가 있을 것임

■ ②사법행정위원회 구성·운영에 영향력 행사

- 당초에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로 예상되었던 목적임

☑ 인권법 커뮤니티에서 논의된 '법관의 사법행정참여방안에 관한 소고' 말미 부분

▶ "4. 2016년 판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 판사회의 실질화, 정례화를 위한 각급 법원 내규 개정 작업 및 직급별 판사회의 정례화

나. 판사회의를 통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출방식 건의 및 위원회 위원 참여

다. 판사회의의 기관 (의장, 간사, 운영위원) 선출방식에 있어서 직선제 도입 및 후보 참여

라. 전국법관회의 창립을 위한 연구 및 기초 작업"

- 위원 후보자 추천과 안건 제출 등에 영향력 행사를 시도할 것임
 - 사법행정위원회의 공식적 추진 일정 ⇨ 4. 1.까지 위원 추천, 4. 12.까지 안건 제안, 5월 중순경 회의 개최
 - [착안점] 이미 공지된 일정에 따르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아니함 ⇨ 유리한 요소로 삼아야 함

■ ③사무분담내규 개정 건의 추진

- 법관들의 희망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
 - 특히 법관들이 보임을 꺼리고 있는 형사단독에 희망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임
- 2014년 김○○ 판사의 의장 재직 당시에도 추진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좌절되었음
 -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투표 방식도 난해하여 의사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투표 결과 부결됨

4. 대응 방향

가. 전체 기조

■ 적정한 긴장감 유지가 필수적임

- 박○○ 판사에게 불필요한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을 각종 판단의 최우선적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함
 -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은 의장 직선제의 상시화를 초래할 수 있음

나. 구체적 대응

■ ① ‘단독판사 의장 직선의 연례화’에 대한 대응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각종 소형 이슈 사전 제거
 - 자기소개서 제출, 통계 회람 등 박○○ 판사가 법관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존재감을 축적할 수 있는 이슈를 사전 제거 필요 ⇨ 서울중앙지법 수뇌부의 사전 양해·이해를 전제로 함
 - 위와 같은 사법행정상 조치를 통한 得보다 전체적으로 보아 법원 운영에 失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 있음 ⇨ ‘小貪大失’을 豫防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 라인의 적극적 활동
 - 기획법관의 단독판사 애로사항 청취, 적극적 해결 등 역할 先占 ⇨ 서울중앙지법 기획 라인의 협조 필요
- 불필요한 존재감 부여에 항시 유의
 - 각종 행사에서 단독판사 의장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는 등 이미지 제고의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은 지양할 필요 ⇨ 단독판사 의장직이 법관들 사이에 다소간이라도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내년 이후도 고려)
 - 법원장 또는 수석부장판사의 단독판사 의장 면담, 회식 등도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공식적·비공식적 조력·지원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 요함

■ ② ‘사법 행정위원회 구성·운영에 영향력 행사’에 대한 대응

- 축박한 일정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
-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위원 추천을 위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위원 추천에 대한 단독판사 회의 차원의 건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응
 - 과감하게 無視하는 것부터 受諾하는 것까지 모두 가능
 - 실제 추천된 인사의 면면을 보고 판단

■ ③‘사무분담내규 개정 건의 추진’에 대한 대응

- 충분히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9월 정기 회의에서 제기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
⇒ 사전에 다각적인 정지 작업이 가능
 - 법원행정처 차원의 원칙과 대응 논리 마련 필요 ⇒ 현재 기초실과 인 사실이 공동 검토 중
 - 전국 법원으로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법리적·정책적인 해석과 결단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임
 - 결정된 정책 판단 내용을 각급 법원이 사전에 공유하여야 함
 - 미리 법관 사회에 여론 조성 활동이 필요함
 - 중요 대응 논리를 사전에 오피니언 리더 법관들에게 주지시키고 판사들에게 충분히 전파하여 신중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사전에 여론 조성 활동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음 ⇒ 선거와 달리 ‘사전 선거운동’의 부담이 없음, 2014년에 이미 이슈화된 바 있어서 사전에 문제 제기와 논의를 하는 것이 어색하지도 아니함
 - 의장 선출의 경우와 달리 보이콧 등의 방식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한다면 의장 선거 시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임(끝)
-



서울중앙 수석부장판사 재편 방안

2016. 3. 26.

인사총괄심의관실

I. 검토 배경

▣ 법관사회 내부 소통의 중요성 갈수록 증가

- 법관사회의 내부 환경의 변화 ⇨ 세대, 성별, 출신의 스펙트럼 다양화로 내부적 동질감 희석되어 새로운 갈등양상 형성되고 있음
 - 합의부 재판장 vs 배석판사
 - 남성 판사 vs 여성 판사
 - 연수원 수료 판사 vs 법전원 졸업 판사
 - 이른바 왕당파 vs 사법행정 비판세력
- 이러한 법원 공동체 내 갈등 요소의 확대를 방지하고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소통의 중요성 날로 높아지고 있음

▣ 수석부장판사의 내부 소통 핵심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

- 최근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회원 중심으로 **판사회의 활성화** 움직임 ⇨ 판사회의 운영을 둘러싼 **법관사회 내부 갈등** 우려 및 판사회의 의결을 통한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견제, 도전** 예상
- 수석부장판사가 법관사회의 구심점으로서 **내부적 통합**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소속 법원 **법관들과 법원장**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발휘해야 함

▣ 서울중앙지법 비대화로 3인 수석부장 체제 한계에 달함

- 2016. 3. 현재 서울중앙 가동법관 337명
 - 민사부의 경우 판사 수가 220명에 달함(4. 1.자 신임법관 포함하면 230명)
- 내부 소통 핵심 역할, 법원장과 법관들 사이의 가교 역할 수행 어려움



II. 수석부장 제도 개관

1. 법적 근거

▣ 법원조직법

제26조(고등법원장)

- ①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 ② 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 ③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⑤~⑥ 생략

제29조(지방법원장)

- ①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 ②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인사발령 및 보임관행

가. 인사발령

- ▣ 대법원장의 인사발령으로 직접 지정함 ⇨ 각급법원의 사무분담 사항 ×
- ▣ 일부 지방법원 수석부장은 고법부장 중에서 보임함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 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방법원의 수석부장 ⇨ 고법부장
 - 직무대리
 - 서울가정, 서울행정 ⇨ 서울고법 부장에 대하여 직무대리 발령
 - 겸임



- 제주 ⇨ 광주고법 제주부 부장에 대하여 경임 발령

○ 나머지 지방법원 수석부장은 지법부장 중에서 보임함

나. 지법부장인 수석부장 보임 관행

■ 서울 시내 지법

○ 중앙지법 거친 소속 부장 중에서 적임자 선발·보임

○ 과거 소속 부장 중 최선서열자를 보임한 시절이 있었으나, 현재는 기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발·보임하고 있음. 기수 역전 사례 있음

○ 대체로 2년 근무 원칙 아래 운영. 다만, 고법부장 보임, 사직 등으로 1년 근무 사례 다수임

■ 지방권 지법

○ 대체로 지역거점법관 중 적임자 보임. 기수 역전 사례 있음

○ 춘천, 제주는 소속 부장 중 최선서열자 보임 관행(2년차 부장)

- 다만 2015년부터 제주지법 수석부장은 광주고법 제주부의 부장이 경임

○ 대체로 2년 근무 원칙 아래 운영(춘천, 제주는 제외)

3. 권한 및 역할

가. 법령에 따른 권한

■ 법원장 권한대행

○ 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법원조직법 §26④ 등)

나. 예규 등에 따른 권한

■ 법원장 위임받아 사건배당 주관

○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이 주관하나,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음(「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9①)



■ 기타

- 각급 법원 국선변호 운영위원회 위원장(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23③)
- 개인파산 등 사건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위원장(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24②)
- 지방법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3①)
- 해외연수선발위원회 위원 자격(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5의2②) ☞ 지방법원 수석부장 중 법원행정처장이 2명 지정
- 지방법원 법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법무사규칙 §47②)

다. 각 법원 위임전결 내규에 따른 권한

-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당해 기관의 내규로 정함(법원 사무관리규칙 §16②)

라. 사실상의 업무 영역 및 역할

■ 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보좌

- 법관 및 재판과 관련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법원장의 참모 역할 ☞ 법령이나 내규에 명시적 근거규정이 있는 것은 아님
- 각종 기획 업무의 실무 총괄

■ 소속 법원 법관들과 법원장 사이에서 가교 역할

- 법관사회의 구심점으로서 내부 소통 핵심 역할

■ 법관 및 재판연구원 평정, 사무분담 등의 초안 작성

■ 각종 실무연구 등 재판 관련 연구회 총괄



Ⅲ. 지방법원 수석부장 현황

지방법원		수석부장				판사 수(2016. 3. 1. 기준 가동법관)			
		성명	기수	직위	사무분담	고법부장	지법부장	판사	합계
중앙	민사	김○○	17	고법부장	신청합의(임시지위)	1	55	164	220
	파산	김○○	18	고법부장	법인회생	1	3	27	31
	형사	신○○	19	고법부장	합의 형사신청	1	26	59	86
서울가정		허○○	18	고법부장	가사항소/항고	1	7	28	36
서울행정		이○○	18	고법부장	행정합의	1	10	31	42
서울동부		염○○	20	지법부장	신청합의		18	48	66
서울남부		심○○	22	지법부장	신청합의		20	59	79
서울북부		오○○	21	지법부장	신청합의/민사항고		14	45	59
서울서부		이○○	20	지법부장	신청합의		14	44	58
의정부	본원	홍○○	21	지법부장	파산부		24	53	77
	지원						10	25	35
인천	본원	김○○	19	고법부장	법인회생파산	1	29	77	107
	지원						8	20	28
인천가정		수석부장 없음					3	7	10
수원	본원	배○○	19	고법부장	법인회생파산/ 회생항고	1	43	95	139
	지원						31	93	124
춘천	본원	김○○	28	지법부장	민사합의/신청합의 /도산합의		10	13	23
	지원						11	22	33
대전	본원	차○○	23	고법부장	법인회생	1	29	48	78
	지원						15	39	54
대전가정		수석부장 없음					2	5	7
청주	본원	양○○	21	지법부장	법인회생파산 /행정합의		15	21	36
	지원						3	12	15
대구	본원	임○○	20	고법부장	법인회생파산	1	38	50	89
	지원						20	44	64
대구가정		수석부장 없음					3	6	9
부산	본원	박○○	19	고법부장	신청합의	1	37	69	107
	지원						7	12	19
부산가정		수석부장 없음					4	7	11



지방법원	수석부장				판사 수(2016. 3. 1. 기준 가동법관)				
	성명	기수	직위	사무분담	고법부장	지법부장	판사	합계	
울산	손○○	22	지법부장	신청합의/도산합의		20	26	46	
창원	본원	정○○	22	지법부장	신청합의/민사항고		25	33	58
	지원						13	29	42
광주	본원	최○○	20	고법부장	법인회생파산 /파산항고	1	30	39	70
	지원						14	25	39
광주가정	수석부장 없음					2	5	7	
전주	본원	박○○	21	지법부장	가사항고/항고		17	23	40
	지원						7	14	21
제주	마○○	23	고법부장	광주고법 제주부 /법인회생파산		9	13	22	

* 법원장은 제외하되, 다만 인천·대전·대구·광주가정은 법원장을 지법부장 인원에 포함

IV. 현재 서울중앙 수석부장 체제 문제점

1. [근본원인] 민사수석부장 재판업무 및 소속법관 과다

▣ 재판업무 과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사건 중 주요 사건 및 비송합의 사건 등을 담당
 - 서울중앙의 경우 임시지위가처분 사건은 인도단행, 공사금지, 처분금지, 접근금지, 지급금지, 서류열람등사, 단체 분쟁, 시위금지, 경업금지 등에 한하여 민사51부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주요 사건은 민사수석부인 민사50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접수 건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어 심하게 다투는 사건, 선례가 없는 사건 등이 적지 않음
 - 약 60%의 사건은 각 배석판사가 수명법관으로 심문기일을 진행하나, 나머지 주요 사건은 매주 1회 민사수석부장이 직접 재판장으로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있음
 - 임시지위가처분 미제는 평균 150건 내외로 관리되고 있으며, 2015년에 월 평균 47건 정도의 결정을 하였음
 - 사건의 약 40%는 지적재산권 관련 가처분 사건임



■ 소속법관 과다

- 민사부 판사 수는 총 220명에 달함(4. 1.자 신임법관 포함 시 230명)
- 고법부장이 수석부장을 맡고 있는 지방법원 평균(100명, 제주 제외)의 2.2배 해당

2. [문제 1] 내부 소통 한계

■ 단독판사회의 활성화 ⇨ 내부 소통 필요성 증가

- 기존 사법행정예 비우호적인 31박○○ 판사(회생단독)가 경선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판사회의 활성화 예상
- 판사회의를 통해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견제하려는 시도(예컨대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무분담 기본원칙 의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밖에 사법행정 현안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집단적으로 제시할 가능성 있음
- 수석부장이 단독판사들과 회식 자리 등을 자주 가지면서 단독판사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슈에 관하여 대응논리를 적절히 설파함으로써 판사회의가 집행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그런데 특히 민사수석부장은 재판업무 부담으로 시간적 여유가 적고, 민사부 전체 판사 수가 지나치게 많아 판사들과 회식 등 접촉기회를 자주 갖기 어려움

- 기획법관, 공보관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이들은 판사들과 사법행정권자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판사들과 사법행정권자 사이의 직접적 소통을 위해서는 수석부장이 전면에서 나서야 함

3. [문제 2] 평정업무 과중 및 평정자료 편중 우려

■ 연임심사 강화 및 각종 선발성 인사 ⇨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수석부장은 사법통계 외의 방법으로 법원과 판사들의 사정을 파악함으로써 사



법통계에 의존하기 쉬운 법원장을 보좌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 그런데 특히 민사수석부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사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기회를 충분히 갖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민사부 전체 판사 수가 지나치게 많아 판사들의 개별적 사정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단독판사의 경우 통계, 배석판사의 경우 재판장 의견서에 의존하게 될 우려가 있음 ⇨ 평정자료의 편중 문제
- 또한, 평정 시기인 11월 ~ 12월에는 평정표 초안 작성 업무가 과중하여 재판업무를 전부 주심판사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함

4. [문제 3] 수석부장 경제적 부담

- 현재 고법부장인 지방법원 수석부장에게는 소속 판사 수와 상관없이 직책수행경비 월 1,125,000원, 사법행정활동비 월 600,000원이 지급되고 있음
- 그런데 중앙 민사수석부장의 경우 소속 판사 수가 220여 명에 이르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예산 지원으로는 회식, 경조사 등을 감당할 수 없음
 - 現 ○○○ 수석부장은 재산이 많아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하나, 前 ○○○ 수석부장은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짐
- 법원장이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원을 해 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부족함

V. 서울중앙 수석부장 재편 방안

1. 3인 수석부장 체제 유지 ⇨ 민사수석부장 재판업무 경감

- 내용
 - 현재의 민사/파산/형사 3인 수석부장 체제를 유지하되, 민사수석부장의 재판업무를 경감하는 방안



-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신청합의부는 2개 재판부(50부, 51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3인 배석 체제임(출산, 연수 예정인 판사를 추가로 배치하기도 함)
 - ⇨ 민사 52부를 신설하여 재판부를 3개로 하고(지법부장 1명 증원), 50부는 2인 배석(1인은 공보관), 51부는 3인 배석, 52부는 2인 배석 체제로 하여 50부 재판업무 비중을 현행의 1/3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50부(수석부)	51부	52부
재판장	고참 고법부장	지법부장	지법부장
배석	2인 (이 중 1인 민사공보관)	3인	2인
사무분담	임시지위가처분	임시지위가처분 +계쟁물가처분	임시지위가처분
비고	현행 50부 업무의 1/3	현행과 같음	현행 50부 업무의 2/3

■ 장점

- 민사수석부장의 재판업무 경감 ⇨ 이로써 확보한 시간을 소속 판사들과의 내부 소통에 투입할 수 있음

■ 단점

- 220여 명에 이르는 과도한 인원을 관장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 ⇔ 금전적 문제는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예산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 필요)
- 임시지위가처분 사건을 3개 재판부가 나누어서 담당하게 됨 ⇨ 민사수석부의 임시지위가처분 사건의 전문성 약화 ⇨ 중요 가처분 사건 재판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우려
 - 법관의 전문성은 처리사건의 양과 질에 달려있는 측면이 큼
 - 서울중앙지법에는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가처분 사건이 적지 않고, 임시지위 가처분의 성격상 본안재판까지 가지 않고 가처분 재판 결과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판부의 권위,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함 ⇨ 종래에는 실력과 인품이 검증된 고참 고법부장이 민사수석부장을 맡고, 민사수석부에서 주요 임시지위가처분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권위와 전문성을 확보하였음



2. 3인 수석부장 체제 유지 ⇨ 민사단독 총괄판사 신설

■ 내용

- 현재의 민사/파산/형사 3인 수석부장 체제를 유지하되, **민사수석부장 밑에 민사단독 총괄판사를 신설하여 민사단독재판부 관련 수석부장 업무 위임**
 - 민사단독 총괄판사는 **법원장의 사무분담권** 행사로 정함(지법부장급으로 보임하되, 본인도 민사단독 일부 담당)
 - 민사단독 총괄판사는 민사단독 판사들과의 소통 업무를 담당하고, 비공식적으로 평정업무에도 관여
- 민사수석부장은 민사합의부·항소부(2016. 4. 1. 기준 128명) 관장하고, 민사단독 총괄판사는 민사단독재판부(단독부장 포함, 2016. 4. 1. 기준 102명) 관장

■ 장점

- 민사수석부장의 행정업무, 소통업무 경감
- 민사단독 총괄판사는 단독판사들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책임자 보임 ⇨ 내부 소통 역량 강화

■ 단점

- 민사단독 총괄판사를 법원장의 사무분담권 행사로 정하는 것이라면 총괄판사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음**
 - 다른 민사단독 판사들이 볼 때에는 **종래의 선임판사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음
 - 평정업무를 일부 담당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다른 민사단독 판사들에게 공개 곤란
- 경선으로 선출된 **단독판사회의 의장과 사이에 알력이** 생길 우려
- 민사단독에만 총괄판사를 둘 경우 **사법행정**에 가장 비판적인 민사단독 판사들을 **장악, 통제하려는 의도로 오해될** 우려
 - ⇔ 합의부·항소부에도 총괄부를 두는 방안, 형사단독에도 총괄판사를 두는 방안 등 검토



3. 민사수석부장 이○○ ⇨ 제1민사수석부장, 제2민사수석부장

■ 내용

- 민사수석부장을 제1민사수석부장, 제2민사수석부장으로 나누는 방안
- 현재 서울중앙지법 신청합의부는 2개 재판부(50부, 51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3인 배석 체제임(출산, 연수 예정인 판사를 추가로 배치하기도 함) ⇨ 민사 52부를 신설하여 재판부를 3개로 하고(고법부장 1명 증원), 각각 2인 배석 체제로 하는 방안

	50부(제1수석부)	51부(제2수석부)	52부
재판장	고참 고법부장	고법부장	지법부장
배석	2인	2인	2인
사무분담	임시지위가처분	임시지위가처분	계쟁물가처분 + 항고
수석부장 관장 영역	합의부·항소부 재판장, 배석판사	단독재판부 재판장	
수석부장 관장 인원 (2016. 4. 1. 기준)	128명	102명	

■ 장점

- 민사수석부장의 재판업무, 행정업무 대폭 경감 ⇨ 이로써 확보한 시간을 내부 소통에 투입
- 민사수석부장의 관장인원도 대폭 감축 ⇨ 고법부장이 수석부장을 맡고 있는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와 균형 맞출 수 있고, 별도의 예산 지원 강화 불요
- 고법부장 1인 증원 효과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는 고법부장급 이상 법관의 보직 중 하나로 단순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 개정 불요
- 제2수석부장은 단독판사들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책임자 보임 ⇨ 내부 소통 역량 강화



■ 단점

- 수석부장 1인 증가에 대하여 판사들이 사법행정권의 강화 움직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
- 수석부장이 4명이나 됨 ⇨ 수석부장 간 관계 설정의 어려움
⇨ 제2민사수석부장이 말석이 될 것이므로, 현행과 별 차이 없음

4. 총괄 수석부장 신설 ⇨ 사실상 부원장 역할

■ 내용

- 현재의 민사/파산/형사 수석부장 외에 총괄수석부장을 신설하는 방안
- 총괄수석부장은 1차 복귀 법원장 중에서 보임하여 사실상 부원장과 같은 지위에서 중앙지법 사법행정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그 밖에 민사부 판사들과의 소통업무도 분담

■ 장점

- 민사수석부장의 행정업무, 소통업무 경감
- 1차 복귀 법원장의 사법행정 경험 활용

■ 단점

- 현행 법원조직법상 복수의 수석부장을 수평적으로 두는 것 외에 수직적으로 둘 수 있는지 의문
- 판사들에게 사법행정권의 강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큼
- 총괄수석부장은 옥상옥의 직위가 되어 오히려 사법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총괄 수석부장과 민사/파산/형사 수석부장의 관계 설정 어려움
- 민사수석부장의 주된 업무는 재판업무가 되어 그 위상이 일반 신청합의부 재판장 정도로 약화될 수 있음



5. 민·형사 수석부장 재판 ⇨ 1심 수석부장(2), 항소심 수석부장

■ 내용

- 민·형사의 경우 수석부장을 민사부와 형사부로 구분하지 않고, 심급별로 구분하는 방안(파산수석부장은 종래와 같음)
- 1심과 항소심에 각각 수석부장을 두되, 1심에는 영역별로 2명의 수석부장을 두는 방안임
 - 1안 : 1심 민·형사 합의재판부 vs 1심 민·형사 단독재판부
 - 2안 : 1심 민사부 vs 1심 형사부

	항소심 수석부장	1심 제1수석부장	1심 제2수석부장
관장 영역	민·형사 항소부	[1안] 민·형사 합의부 [2안] 민사 합의/단독	민·형사 단독(부장 포함) 형사 합의/단독
사무분담	민사 또는 형사 항소	[1안] 임시지위가처분 [2안] 임시지위가처분	형사 재정합의 형사 신청합의
관장 인원 (2016. 4. 1. 기준)	45명	[1안] 140명 [2안] 203명	131명 68명

■ 장점

- 서울중앙지법 1심과 항소심의 사법행정 분리 ⇨ 항소법원 대비
- **고법부장 1인 증원 효과**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 불요

■ 단점

- 1심 수석부장을 합의재판부와 단독재판부로 구분할 경우(1안) 단독재판부 수석부장을 단독부장으로 보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고법부장인 수석부장의 위상에 맞을지 의문
 - ⇨ 단독재판부 수석부장은 지법부장으로 보임하는 방안(「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 필요)
- 1심 수석부장을 합의재판부와 단독재판부로 구분할 경우(1안) 각 수석부장은 민·형사 전부 담당하게 되므로 재판 관련 사법행정의 전문성, 효율성이 약화



될 우려가 있음

- 민사부/형사부 워크숍, 민사부/형사부 각종 연구회등의 운영 문제
 - 민·형사 구분되어 있는 다른 사법행정 조직·기능과 궤가 맞지 않음
- 1심 수석부장을 민사부와 형사부로 구분할 경우(2안) 민사부 인원이 203명에 달하여 1심 민사부 수석부장의 업무 부담이 매우 큼 ⇨ 현행 체제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음



서울중앙 수석부장 재판 실행방안

2016. 4. 5.

인사총괄심의관실

I. 재판 방향 : 민사수석부장 이원화

■ 목표

- ① 現 민사수석부장의 과도한 업무 경감 ⇨ 단독판사들과의 소통 역량 강화
- ② 임시지위가처분 담당재판부 재판 ⇨ 전문성, 신속성, 권위 제고

■ 내용

○ 현행

	50부(수석부)	51부
재판장	고법부장	지법부장
배석	3인 (기획법관 별도)	3인
사무분담	주요 임시지위가처분 + 비송합의(기획법관)	특정 임시지위가처분 + 계쟁물가처분
사법행정	민사부 전반	-
근무평정	민사부 전체	-
수석부장 관장 인원 (2016. 4. 1. 기준)	230명	-

○ 개편안

	50부(제1수석부)	51부(제2수석부)	52부
재판장	고법부장	고법부장	지법부장
배석	3인 (기획법관 별도)	3인	2인
사무분담	민사항소(1/3) + 비송합의(기획) + 임시지위가처분 <회사가처분 전담>	임시지위가처분 <지재가처분 전담>	계쟁물가처분 + 소제기 전 증거조사 or 민사항고
사법행정	전반	일부	-
근무평정	항소부 + 단독재판부	합의부	-
수석부장 관장 인원 (2016. 4. 1. 기준)	129명	101명	-



- 중요성이 특히 큰 임시지위가처분 사건을 고법부장이 재판장인 제1수석부와 제2수석부에서 담당하고, 회사가처분 사건은 제1수석부에서, 지재가처분은 제2수석부에서 전담
- 일반 신청합의부인 52부는 계쟁물가처분 외에 201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전담(합의사건) ☞ 소제기 전 증거조사 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민사항고 사건 일부를 담당하는 방안 검토

■ 장점

- 민사수석부장의 재판업무, 행정업무 경감 ⇨ 이로써 확보한 시간을 내부 소통에 투입
- 민사수석부장의 관장인원도 대폭 감축 ⇨ 고법부장이 수석부장을 맡고 있는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와 균형 맞출 수 있고, 별도의 예산 지원 강화 불필요
- 임시지위가처분 재판의 권위, 전문성, 신속성 향상

[배경] 서울중앙지법에는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가처분 사건이 적지 않고, 임시지위가처분의 성격상 본안재판까지 가지 않고 가처분 재판 결과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판부의 권위, 전문성 등이 특히 중요함

- ① 두 재판부 모두 고법부장이 재판장 ⇨ 재판의 권위 제고
- ② 재판부별 전담사건 지정 ⇨ 회사가처분, 지재가처분 전문성 제고
- ③ 임시지위가처분 전담 배석 5인 ⇨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

- 민사수석부장이 민사항소 사건 일부를 맡음으로써 민사단독판사들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 실질화 가능
 - 형사수석부장이 형사항소 사건 일부를 맡게 된 이후, 형사단독판사들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이 실질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

- 고법부장 1인 증원 효과

■ 단점

- 수석부장 1인 증가에 대하여 판사들이 사법행정권의 강화 움직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



⇔ 서울중앙지법의 민사부 소속 판사 숫자가 너무 많고, 민사수석부장의 재판 업무 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명분이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우려는 그리 걱정할 만한 것이 아님

○ 수석부장이 4명이나 됨 ⇨ 수석부장 간 관계 설정의 어려움

⇔ 고등부장 상호간의 기수, 서열 문제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어서 그리 걱정할 만한 사항은 아님

○ 제2수석부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결과

- 지재가처분 사건 전담

- 고법부장 보임을 앞둔 합의부 재판장들에 대한 사실상의 평정권한 행사

II. 각각의 수석부장의 명칭

1. [1인] 민사수석부장, 신청수석부장

▣ 장점

○ 전례가 있음 ⇨ 00'07~01'02 양○○ 민사수석부장, 강○○ 신청수석부장

⇔ 대법원장님은 당시 파산수석부장을 하면서 민사수석부장을 겸임하였으나, 실제 재판업무는 파산부 담당이었고, 민사50부는 강○○ 신청수석부장이 담당하였음

○ 둘 다 '수석부장'에 해당하므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 불필요

▣ 단점

○ 명칭과 실제 역할이 불일치

- '신청수석부장'이라는 명칭은 '신청부'에 대한 수석부장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 '민사합의부'를 총괄하는 수석부장의 명칭으로는 적절하지 않음

- '신청수석부장'이라면 신청단독판사도 관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신청단독판사는 민사수석부장 소관에 속하게 됨



2. [2안] 민사총괄수석부장, 민사합의수석부장

■ 장점

- 각각의 지위와 역할에 부합하는 명칭임
- 둘 다 '수석부장'에 해당하므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 불필요

■ 단점

- 민사수석부장 명칭에 '총괄'이 들어가게 되면 형사수석부장, 파산수석부장과의 관계에서 민사총괄수석부장이 항상 최선임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 '총괄수석부장'이 아니라 '민사총괄수석부장'이므로 기우에 불과
- '총괄'이라는 표현에 의해 두 수석부장 간 서열이 드러남

3. [3안] 민사제1수석부장, 민사제2수석부장

■ 장점

- 검찰의 제1차장, 제2차장과 같은 방식으로 비교적 익숙한 명칭임
- 둘 다 '수석부장'에 해당하므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 불필요

■ 단점

- 두 수석부장 간 서열이 부각됨
 - 제2수석부장이 합의부 재판장에 대하여 사실상 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2수석부장도 고참 고법부장으로 보임할 경우, 더욱 바람직하지 않음
- 사법행정업무만 담당한다면 제1, 제2를 붙여도 무방할 것이나(예: 제1심의관/제2심의관), 재판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은 측면

4. [4안] 민사향소(단독)수석부장, 민사합의수석부장

■ 장점



- 명칭만으로도 각각의 관장 영역을 짐작할 수 있음
- 두 수석부장 간 서열이 부각되지 않음
- 둘 다 '수석부장'에 해당하므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 불필요

■ 단점

- '민사항소단독수석부장'은 명칭이 너무 길고, '민사항소수석부장'이라고만 할 경우에는 민사단독 파트가 누락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민사항소(단독)수석부장은 아래에서 보듯이 재정합의결정, 민사부 홍보업무 지휘, 민사부 사무분담 1차 분류 등 민사부 사법행정 총괄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 내지 역할이 명칭에 드러나지 않음

III. 각각의 수석부장 간 권한 및 역할 분배

- 아래에서는 일단 '민사총괄수석부장', '민사합의수석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함

1. 법원장 권한대행

- 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함(법원조직법 §26④ 등)
- 민사수석부장 이원화 시 서울중앙지법에는 4명의 수석부장이 존재하게 되는바, 이 중 선임부장이 법원장 권한대행을 하게 될 것임

2. 사건배당 주관

-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이 주관하나,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음(「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9①)
- 민사총괄수석부장은 민사항소부 및 민사단독재판부, 민사합의수석부장은 민사합의부 관련 사건배당 주관하게 될 것임



- 민사단독사건 중 중요사건 등 ‘재정합의 대상사건’에 대하여 재정결정부 회부를 할 수 있는 ‘사건배당 주관자’(「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①) 및 ‘재정결정부 재판장’ 등은 민사총괄수석부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서울중앙지법 내규에 명시할 필요

3. 규칙, 내규상 각종 위원, 위원장 등

- 법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 위원장은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됨(법무사규칙 §47②)
 - 민사총괄수석부장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는 민사총괄수석부장판사”라는 규정 추가
-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혹은 선임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함(「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3①)
 - 민사총괄수석부장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는 민사총괄수석부장판사”라는 규정 추가
-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 각급법원 위원회의 장은 각급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또는 선임법관으로 함(법원 민원 처리 내규 §34②)
 - 4명의 수석부장 중 선임부장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만약 민사부 수석부장이 담당해야 한다면 민사총괄수석부장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는 민사총괄수석부장판사”라는 규정 추가
- 홍보업무 지휘
 - 각급법원의 공보관은 해당 법원장 또는 수석부장의 지휘를 받아 홍보업무에 관하여 해당 법원장을 보좌함(법원홍보업무에관한내규 §6②)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은 민사총괄수석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



당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의 경우는 민사총괄수석부장판사”라는 규정 추가

■ 해외연수선발위원회 위원

- 해외연수선발위원회 위원 중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인’이 있고, 이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명함(「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5의2 ②,③)
- 당연직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직이므로 내규 개정 불필요

4. 내부 소통, 평정 초안 작성, 사무분담 초안 작성 등

- 민사총괄수석부장은 민사항소부 및 민사단독재판부, 민사합의수석부장은 민사합의부 담당
- 다만, 사무분담 초안 작성 관련하여 민사항소부, 민사합의부, 민사단독재판부에 관한 1차적인 분류는 민사총괄수석부장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
⇨ 내규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사실상의 역할 배분의 문제일 뿐임

IV. 시행시기

1. [1안] 2016년 8월

■ 장점

- 서울중앙 민사단독판사 조기에 장악 ⇨ 2016년 하반기 단독판사회의의 제어
 - 2016년 하반기에 ‘희망 최우선’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관한 판사회의 개최 예상
- 2016. 7.~8. 이○○ 대법관 후임 제청 후 고법부장 이상 소폭 인사 실시할 경우 자연스럽게 시행 가능
 - ⇨ 외부 인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될 경우 인사요인이 없을 수 있음
- 복귀 법원장 등 사법연구로 인하여 2016년 하반기 서울고등 고법부장 1인 과원 가능성 있는바, 이 문제 해소 가능



- 2016년 복귀 법원장 등 사법연구 : 상반기 4명, 하반기 3명
- 민사수석부장 이원화 시 서울중앙 고법부장 공석 1개 발생

■ 단점

-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시점에 민사수석부장이 2인으로 늘어날 경우 민사단독 판사들에 대한 장악 시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 ⇔ 사전에 법률신문을 통해 서울중앙 민사부의 비대화를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하는 방안 검토

2. [2안] 2017년 2월

■ 장점

- 고법부장 이상 정기인사 때 시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 2016년 하반기 파산법원 신설법안 통과, 2017년 3월 신설 가정 ⇨ 서울중앙지법 3인 수석부장 유지
 - 파산수석부장 폐지
 - 민사총괄수석부장/민사합의수석부장/형사수석부장

■ 단점

- 단독판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사법행정권 도전에 대하여 대응시기를 놓칠 우려
 - ⇨ 대법원장님 임기 말 리더십 타격 예상
 - 2016년 하반기에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관한 판사회의 개최 예상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 연구반 개요

-가칭 「충실한 재판 연구반」-

2016. 5. 13.

1. 구성(9명)

▣ 운영진(의장 1, 간사 4) 모두 연구반원으로 참여

● 의장: 박○○ 판사(31기, 개인회생단독)

● 간사: 김○○ 판사(32기, 중액단독), 이○○ 판사(33기, 형사단독), 윤○○ 판사(34기, 신청단독), 문○○ 판사(37기, 소액단독)

▣ 그 외 연구반원(4명) 섭외

● 최○○ 판사(33기, 신청단독), 안○○ 판사(34기, 중액단독), 김○○ 판사(36기, 개인회생단독), 홍○○ 판사(38기, 소액단독)

▣ 김○○, 이○○ 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2. 목적

▣ '처리건수와 효율성에 치우친 재판의 문제', '비재판업무 부담의 문제' 등 좋은 재판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나 관행이 무엇인지를 검토(연구반 회의) ⇨ 판사들부터 수렴된 의견 종합(점심 간담회 등) ⇨ 판사회에 부의할 안건 성안

3. 운영 일정

▣ 5. 4.(금) 1차 회의 개최 ⇨ 이후 2주 간격으로 회의 개최

▣ 매 회의 후 회의록 정리하여 단독판사들에게 공지할 예정



판사들의 수다 I

판사들, 난상토론을 시작하다.

날치 : 그 동안 공부들은 다들 잘하고 오셨는지? 법원행정처 등 연구회에서 만들어진 자료들 중에 참신한 의견이 많더라. 적정처리건수를 정하는 문제라던지, 기획법관을 선출한다던지, 판사회의를 좀 더 실질화한다던지 등등

거북 : 다들 그간 고민했던 것들이 많을 거 같다. 돌아가면서 한명씩 말해봤으면 좋겠다.

기획법관? 고충처리법관이 필요하다.

해마 : 판사들의 고충을 업무로써 전담하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양성평등이나 성희롱 등의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중간 통로를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통로가 기획법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판사회의에서 그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간사를 뽑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기획법관처럼 업무부담도 줄여줘서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일선 판사들의 신망을 얻어 선출된 분. 기존 기획법관의 업무는 하향식 업무나 의사전달 통로로 쓰일 뿐 상향식 의사전달로는 부적당한거 같다.

갈치 : 기획법관의 문제가 아니라 임명이 아니어서 의사전달이 안되는 건 아닌지.

해마 : 그건 아닌 거 같다. 지금 현재의 기획법관들은 그런 걸 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거 같다.

고래 : 지원 단위의 작은 법원에서도 기획법관이 생기고 있다. 거의 다 생기고 있다. 그런데 작은 법원에서는 기획법관들의 재판 업무를 줄이는 거에 관해서 논란이 있다. 거의 법원장님 비서 역할이다. 판사가 굳이 해야 할 일인가? 총무과에서 할 일이 아닐까. 다른 판사들의 업무분담에 끼치는 영향은 큰 반면 재판충실에는 오히려 반하는 거 같다.

물개 : 사무분담에 기획법관의 업무에 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 해마 :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획법관에게 말했다가 냉대받은 경험이 있다.
- 날치 : 기획법관들마다 판사들의 고충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다른 거 같다.
- 물개 :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사들이 수석부장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거 같다. 그냥 기획법관 거치지 않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되나?
- 날치 : 단독판사들도 문제지만 배석판사들은 또 다르다.
- 해마 : 젊은 배석들은 우리와 또 성향이 다른 거 같다. 특히 작년에 법원문화개선위원회에서 합의부 밥 먹는 걸로 이슈가 선점되었는데 아쉽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배석 판사들이 그런 문제조차도 힘들게 생각하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 해마 : 우리가 연구한 것들을 전체 판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면 단독 판사 위주가 아니라 전체 법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를 했으면 좋겠다.
- 거북 : 기획법관 문제는 나도 관심이 있는 주제이긴 한데, 논의 방향도 다양하고. 따로 날을 잡아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
- 물개 : 정○○ 판사님이 의장되면 다 처리해주신다고 했었는데.
- 모두 : 투표를 잘못 한 듯 ^^
- 고래 : 뭔가 문제를 말하려고 해도 기획법관들이 너무 자질구레하게 일을 많이 맡고 있어서 내가 이런 것까지 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 날치 : 기획법관을 위시해서 판사들 사이에 충이 늘어나는 건 서열의식, 대접받고 싶어하는 문화 때문이기도 해서 쉽게 없어지기 힘들 거 같다.
- 거북 : 다른 의견들은 없으신지.

‘처리건수’는 ‘충실한 재판’의 최대의 적?

- 날치 : 모임 전에 기존 자료들도 공부하고 또 다양한 판사들과 이야기도 나누어봤다. 전체적으로 판사들이 무기력감이라고 해야 하나. 뭔가 패배의식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변할까.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다. 또 기존 자료들을 보니 법원의 관료화부터 법복을 정기적으로 공동세탁하자는 의견까지 내가 평



소에 생각지도 못한 많은 문제점들을 판사들이 다 논의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들이 거의 반영이 안되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판사들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 같다. 주체적이지 못해서 그런 거 같다. 행정처에서 먼저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문제다. 생각을 바꿔야한다. 우리 연구모임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이슈를 욕심내지 말고 구체적인 이슈 한두 개를 다루되 우리가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가장 확실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걸 이슈로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적정처리건수를 정하는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적정처리건수'라는 용어는 좀 오염된 감이 있으니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충실한재판가능건수'는 어떨까? 우리 법원 차원에서 법원장님께 제의해서 정할 수도 있고 안되면 단독판사회의에서 자체적으로도 정할 수 있다.

문어 : 적정처리건수만 정해진다고 해서 다되는 건 아닌 거 같다. 처리건수라는 기준이 빠지면 그것을 채울 뭔가 다른 다양한 것들도 함께 논의되어야할 거 같다.

물개 :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하려고 해서 문제인거 같다. 저글링 할 때 공이 많아지면 정신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에 돌리는 건수 자체가 적정해야한다.

갈치 : 사건이 많이 돌아가는 이유가 꼭 통계때문은 아니지 않나?

물개 : 그래서 즉시 배당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건을 처리하면 또 다른 사건을 배당 받는 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전에 문지기 재판부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문어 :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진 이유가?

날치 : 일부 외국법원에서는 즉시 배당하지 않고 법원 전체에서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일선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면 새롭게 배당하는 그런 식으로 배당을 한다고 들었다.

해마 : 그래서 외국 법원에서는 절차만 담당하는 판사들도 많다고 들었다. 파트타임 판사 제도가 도입된 마당에 그런 업무를 맡게 하면 되지 않나?



문어 : 그런 업무를 맡는 판사들은 싫어하지 않을까?

해마 : 파트타임은 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한다.

갈치 : 그런데 우리가 꼭 통계때문에 사건을 많이 돌리는 건 아닌 거 같다. 배당이 많이 되기 때문이다. 배당을 늦추는게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다.

물개 : 배당 이전에 이미 실질적인 변론이 가능한 단계인지까지 분류해서 배당했으면 좋겠다. 감정이나 검증신청도 가능한 그런 사전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거북 : 문지기 재판부랑 실질적으로 비슷한 역할인거 같다.

날치 : 판사회의에서 배당을 이런 식으로 하자고 결의할 수도 있나? 우리법원 차원에 서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인지.

거북 : 다른 안건은 없으신지?

이제부터는 1심이 중심이다.

문어 :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항소심을 사후심적으로 운영해야 1심이 더 충실해 질 수 있을 거 같다. 그래야 법원 전체도 업무부담이 줄어들고. 재판은 1번으로 끝난다는 의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그런 원칙을 단독판사회의에서 선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북 : 1심에서 증거를 많이 채택하고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랑 신속한 처리랑 다 같이 갈 수는 없다. 지금은 서로 눈치보는 단계인데 단독판사회의에서 그런 걸 집어주는 것도 좋을 거 같다.

거북 : 순서가 바뀌었다고 본다. 1심 충실화가 먼저다. 지금 이 모임의 전체도 1심이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전체에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 단독판사들이 항소심을 사후심적으로 운영하자고 결의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은가?

고래 : 1심 충실화의 전체들 중 하나로 제안하는 것이다.

물개 : 법률자체가 항소심이 속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떨지. 입법론적으로는 사후심으로 하는게 더 타당한거 같긴 하지만.



갈치 : 지금은 예전처럼 빨리 끝내는 분위기는 아닌 거 같다. 다만 변호사들이 1심판결을 받아본 후 다시 주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물개 : 적절한 심증개시가 필요할거 같다.

해마 : 그것도 사건건수가 줄면 될 거 같다.

날치 : 능력의 차이도 있다. 모두 다 즉석에서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

문어 : 즉석에서 이해하고 토론하는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에서 할 수 있을까?

해마 : 바로바로 이해 안되는건 속행 기일을 짧게 잡아서 해결할 수 있다. 이해 안되면 검토하겠다고 하고 다음 날 기록검토한 후 바로 다시 기일 잡으면 된다. 이것도 사건이 적으면 가능하다.

모두 : 결국 건수가 문제구나.

물개 : 심증개시를 안하는 것도 문제다. 1심에서 다뤄지지 않다가 판결에서 그것 때문에 결론이 나면 항소를 안 할 수가 없다.

거북 : 차○○ 판사가 만든 독일재판에 대한 논문을 읽었는데 우리와 완전 다르다. 우리 민사소송법 독일식 모델을 생각하면서 개정했는데, 독일식에는 완전 전면적 토론과 판사의 심증개시가 있다.

해마 : 또한 독일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활발히 받고 있다.

날치 : 건수의 문제도 좀 더 면밀히 보자면 1심 재판장 당 건수가 문제가 아닌가. 1심 재판장 수는 판사 수를 급격하게 늘이지 않아도 현재 구조를 변경해서도 할 수 있다. 항소심을 줄이고, 비재판보직에 있는 판사수를 줄이고 합의부 소가를 늘여서 1심 재판장 수를 늘이면 되지 않나.

해마 : 행정처에서도 그런 논의를 했었던 것으로 안다. 왜 실행이 안되는 건지. 그런데 건수가 줄어도 장기미체가 2년이면 너무 부담되지 않나?

합의부 배석도 판사지 말입니다.



갈치 : 적정처리건수나 그런건 오히려 단독들보다 합의부 배석들에게 더 필요한거 같다. 단독들은 그래도 스스로 처리건수를 조절할 수 있지만 합의부 배석들은 부장님들이 정해 준 대로 해야 한다.

날치 : 지금 우리 법원에서 제일 고생하고 있는 판사들이 합의부 배석들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그런데 단독판사회의에서 배석들 문제를 논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다.

물개 : 궁극적으로는 현행 배석제도를 없애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 지금 현행 제도는 현행 법에도 맞지 않다. 원래 법 취지대로 대등한 법관 3명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문어 : 법원에서 합의부 부장될 사람을 선출했으면 좋겠다.

날치 : 배석들이 가고 싶은 부장을 적어서 2명이상이 지원하면 그 분이 부장이 되는 방식? ^^

다시 한번 '법원 내 재판의 독립'을 생각한다.

해삼 :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안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통계돌리기 등. 지금 우리 법원에서도 형사부에서는 한 달에 한번 통계를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형사 같은 경우 큰 건이 배당되면 그 재판부에는 배당을 줄여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확대해서 즉시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적정 처리건수가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사건을 배당하는 방법이 현 시스템 하에서도 가능한거 아닌가 한다.

또한 재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재판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장님이나 수석부장님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언급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은 법관들의 워크샵 내지 토론회에서 상호 토론을 통하여 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재판 관련 감사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거북 : 형사부에서 지금도 통계를 돌린다면 작년 법관소통마당에서 했던 설문조사결과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해서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이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거북 : 통계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처리건수와 조정건수만 신경쓰고 있다. 처리건수 위주의 패러다임만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재판의 질에 대한 평가로 바뀔 수 밖에 없다. 항소률, 중국률, 파기률 등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기준에 방점을 두는 걸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사건을 200건 정도 주고 시범재판부를 운영해봤으면 좋겠다.

물개 : 자원하고 싶다^^

날치 : '충실한재판가능건수'를 우리가 매해 정해서 발표했으면 좋겠다. 단독판사차원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어서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시범재판부에서 모든 사건을 다 충실한 재판모델로 운영할 필요도 없다. 전체 사건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퍼센티지를 알아 본 후 각각의 유형 당 2건 정도만 실제 기록검토, 재판 운영, 조사 및 판결작성에 들어가는 실제 시간을 체크하고, 그걸 전체로 환산하면 된다. 판사들 몇몇만 자원해서 실행해 보면 된다. 그 것과 판사들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완해서 산정하면 될 거 같다.

물개 : 2010년에 법원에서 외부용역을 줘서 실제 판사들이 하는 업무를 타이머로 체크한 적이 있는데 판사일이라는게 계량하기 힘들어서 판사증원 필요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다.

거북 : 그리고 일부 사건만 선별해서 하면 그렇게 못하는 사건 당사자들과의 형평의 문제도 있지 않나.

해마 : 그냥 동참하는 판사들을 많이 받아서 해보는 게 좋을 거 같다.

전복 : 이미 기존 자료들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거 같다. 충실한 재판의 전제 조건으로 사건수가 적어야한다는데 동의한다. 그게 핵심은 맞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을지. '충실한재판가능건수' 자체는 좋은 아이디어지만 어떻게 그걸 산출할 수 있을지.



해삼 : 시범재판부 좋은 아이디어인거 같다. 충실한 재판을 해서 종국률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거 같다. 어떤 부지런한 판사는 한 달에 한번 까다로운 사건 한 두건을 정해서 증거조사기일을 운영한다고 들었다. 그거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심증이 개시되면서 당사자들이 결론을 더 잘 알게 된다고 들었다.

문어 : 현재는 효율성을 중요시해서 좀 의심스러운 것도 다시 변론을 열어서 당사자들 의견 듣지 않고 그냥 혼자 사무실에서 보고 만다.

물개 :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서면이나 증거에서 알 수 없었던 중요한 사실관계를 발견할 때도 있다.

거북 : 결국 사법행정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논의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을 심리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다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소액판사들은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다.

날치 : 소액판사들은 어떤가? 건수도 많고 여건이 많이 안좋다고 들었는데.

★ : 법원 들어와서 요즘 제일 야근을 많이 하고 있다. 소액의 경우 지금 재판부 밖에 사건진행에 대한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한다. 전광판의 설치목적은 알겠는데 사건 진행 정도를 클릭하는 것도 일이 많은 실무관이 하고, 재판관의 압박도 있고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사건에 1분에서 2분 정도 밖에 할당되지 안 된다는 걸 알리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

그리고 한 기일 당 800건 중에 700건이 금융공시인데 계속하다보면 대부업체 직원이 된 거 같다. 판사로서 자긍심이 떨어진다.

■ : 지급명령에 대해 공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도 사법보좌관들이 공시요건판단이 어렵다고 거의 이용하지 않아서 줄어드는 효과가 없다.

★ : 금융공시는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날치 :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거 같다. 좀 더 충실하게 진행해야할 재판에 판사들의 역량이 투입되어야할 거 같다.



해삼 : 소액판사들은 아무래도 통계도 신경을 많이 쓰지 않나?

★ : 아무래도 앞자리 수가 바뀌니깐.

■ :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다. 그래서 실무관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다.

거북 : 판사들의 역량을 분쟁성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밤샘토크가 필요한 때

거북 :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자면, 충실한재판가능건수(행정처에 건의해야할 차원일지, 법원장님께 건의해야할지, 단독 판사 자체적으로 할지, 산정방법과 시행의 문제 등), 통계패러다임의 양에서 질로의 변화, 즉시배당에서 적시배당으로,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행동의 자제, 기획법관문제(상명하달 문제, 기획법관의 역할,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 경우 항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지), 재판을 하는 판사들의 과외업무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다음 모임부터는 하나의 소주제를 나누어서 집중토론했으면 한다. 합의부 문제는 또 따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한다.

날치 : 이야기하다보니 밤을 새겠다. 왜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지. 아예 방 잡아서 1박 2일 동안 해야 할 거 같다.

해마 : 그것도 부족할 듯.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1.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이익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세비 등 이익과 직결됨

2. 전합 회부

가. 긍정적 요소

- ▣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을 보다 명징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음

나. 부정적 요소

▣ [주문이 상고기각일 경우]

- 현재 결정과 차별성 있는 논리 구성이 쉽지 않음
 - 현재 결정 :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주된 이유로 의
원직 상실결정 내림

- 위헌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취지와 그 제도의 본질적 효력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위헌정당 해산은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음
-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위헌정당해산 제도가 가지는 헌법수호의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나아가 정당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됨
-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지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하여 신분 유지의 헌법적인 정당성을 잃으므로 그 의원직은 상실되어야 한다.

- 서울고등법원 판결 : 현재 결정 취지와 사실상 동일함

- 정당이 목적이나 활동에 있어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 직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해산된 정당의 사상이나 이념을 따르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계속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이나 헌법수호의 목적 달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유지시키는 것은 헌법수호를 위하여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위헌정당을 해산하면서도 당해 정당이 위헌정당임을 알면서 이를 부인하고 끝까지 당해 정당에 남아 있는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되고, 그 정당의 위헌적인 사상이나 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는 활동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위헌정당을 해산한 목적이 무의미하게 된다.**
- **헌법과 법률이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정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결정 당시 당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는, 현재 결정[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소속 국회의원도 직위를 상실하는 것은 맞지만, 의원직 상실 여부 판단 권한은 현재가 아닌 법원에 귀속한다는 것임
 - 오직 사법부만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선언하면서 현재 결정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 제기될 수 있음
 - 현재 결정과는 다른 논리로 국회의원 직위 상실된다고 설시할 경우 비판의 강도는 약화될 수 있을 것이나 논리 구성이 여의치는 않음
- ⇨ 현재 결정과 별 차이가 없는 논리 구조로 상고기각을 하면서 전합 판결을 내는 것은 전합 판결의 위상과 권위에도 부합하지 않음

■ [주문이 파기환송일 경우]

- 기존에 검토한 바와 같이 본안 판단에 들어갈 경우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은 '청구인용'임
- 파기환송 주문은 대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하여 현재와 반대의 결론

을 내렸다는 의미인바, 그 자체로 파장 예상되고 파기환송 판결의 형식이 전합 판결이라면 파장은 더욱 클 것임

- 언론의 반응 역시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대법원-헌재 간 갈등을 주제로 양비론 입장의 기사 양산 예상됨

다. 검토

- 기념비적인 법리를 선언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전합 판결은 득보다 손해가 많다는 의견임
- 헌재 계속 중인 전합 판결 관련 사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
- ⇨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하는 데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할 것임

3. 기타 고려사항

- 전합 회부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될 경우 ⇨ 퇴로가 없음
 - 현재 전합 회부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된 사건 중 일부는 소부 판결 선고로 종국되고 있음.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언론 등의 문제 제기는 없는 상태임
 - 이 사건의 경우 전합 회부 사실 자체로 다수 언론의 관심 유발할 것이고, 전합 선고를 전제로 예측 기사를 양산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사건의 산출물은 전합 판결이어야 함 [끝]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6. 2. 24.

기획조정실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2016. 2. 24.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가. 사건 진행 경과

① 1. 29.(금)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

- [발표] 송○○ 판사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
- [참석] 사○○, 이○○, 정○○, 이○○, 김○○ 부장판사, 박○○, 홍○○, 이○○, 이○○, 김○○, 이○○, 신○○, 진○○, 류○○, 홍○○ 판사
 - ▣ [밀출 표시] 우리법연구회 前, 現 회원(이하 같음)
- [내용] 발표문의 요旨
 - [헌법 정신] 헌법상 법관 독립의 원칙은 ‘법관의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규정 ⇨ 수직적 사법행정체계는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음
 - [법원조직법의 개정 필요성]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관료적 사법행정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은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되어야 함 ⇨ 단, 현실적으로 개정은 쉽지 않음
 - [무엇을 할 것인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판사회의의 활성화 및 사실상 의결기구화를 통하여 수직적, 관료적 사법행정체계를 수평적, 민주적 법원운영방식으로 바꾸어야 함 ⇨ 사법행정위원회를 판사회의의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

☑ 송○○ 판사(○○기)

▶ [특징]

-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리더

(사진)



- 인사모 등 각종 소모임을 결성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現 활동 방식은 송판사가 우리법연구회에서 구축한 활동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임
- ▶ [주된 관심사]
 - [요약] 송○○ 판사의 주된 관심은 '사법행정위원회의 활성화'보다는 '**판사회의의 활성화**'에 있음 ☞ 사법행정위원회를 **판사회의 활성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임
 - [목적]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 ⇨ "**판사회의라는 회의체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으로 전환
 - [수단] ① 각급 법원에서의 판사회의 활성화, ② 미국연방사법회의와 유사한 전국 단위의 전체판사회의 결성 및 활성화

② 2. 1.(월) 송○○ 판사가 코트넷의 '제도개선법관토론방' 게시판에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 게시

- ☑ 건의문 내용 요약
- ①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에 대한 판사회의 선출 필요
 - 위원의 2/3 또는 적어도 과반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해야 함
 - ② 각 위원회를 총괄하는 전체회의를 만들어야 함
 - ③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판사회의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판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각급 법원 판사회의 내규 개정 필요

● 법관들의 반응 (건의문의 게시 범위: 법관 限定)

- 2. 24. 01:00 현재 조회수 636, 댓글 27개
- 2015. 9. 15. 제도개선법관토론방이 개설된 이후 게시된 총 38건의 게시글 중 조회수 636회로 5위, 댓글수 27개로 2위 ☞ 조회수가 더 많은 4개의 글들은 모두 부장·배석 관계 등 합의부 운영에 관한 것임
- ❖ [조회수] ① 801 > ② 741 > ③ 670 > ④ 665 > ⑤ **636** > ⑥ 606
- ❖ [댓글수] ① 32 > ② **27** > ③ 22

● 분석 ⇨ '댓글 작성' 등 조직적 대응의 분위기가 감지됨

- 송판사의 게시글이 법관들의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긴 하나, 조회수에 비하여 댓글수가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임 ☞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핵심 리더인 송○○ 판사가 자신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임

- 댓글 작성한 대부분의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고, 비회원인 일부 판사(예: 강○○ 판사)는 송판사와 같은 방 사용
- 송판사와 친분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모 판사가 전○○ 부장판사(前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게도 댓글 작성을 부탁하였다고 함

③ 2. 15.(월) 김○○ 부장판사가 **법률신문에 “판사와 사법행정”**이라는 제목의 칼럼 기고하여 송○○ 판사의 주장 소개

- [기고 경위] 송○○ 판사 등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임
- 김○○ 부장판사는 2015년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였음
- 송○○ 판사의 2. 1.자 코트넷 게시글이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지 않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통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법률신문 칼럼 필자인 김○○ 부장판사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임

☑ 김○○ 부장판사 칼럼 中 송판사의 주장을 소개한 부분

▶ 최근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의 주요영역에 관하여 전국 법관들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방안'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그 발표 후 코트넷의 제도개선법관토론폰방에는 이에 공감하면서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대표의 3분의 2 또는 과반수는 각급 판사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이 게시되었고, 많은 판사가 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④ 2. 23.(화) **경향신문에 송○○ 판사의 주장 소개하는 기사 게재**

- [게재 경위] 송○○ 판사 등이 코트넷 게시글을 경향신문에 전달한 것으로 추측됨

☑ **침묵 깬 판사들 “사법행정 참여 위원 우리가 뽑자” (경향, 2. 23.자)**

22일 법원에 따르면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서울중앙지법 송○○ 판사가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판사는 이 글에서 "사법행정위원회(가칭)에 참여할 위원들을 판사회의를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라도 각 위원들의 과반수는 선출된 판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에는 다른 판사들의 지지글도 다수 올라오고 있다.

5. 2. 26.(금)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 개최 예정

- “사법행정 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토론회”
- [주제1] 판사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발표자: 김○○ ○○지법 부장판사(30기, 2014년도 ○○○○지법 단독 판사회의 의장)
- [주제2] 각급 법원 판사회의 내규 분석 및 개정안 제시
 - 발표자: 홍○○ ○○○○지법 판사(35기, 익명카페 이사야 운영자)
- [참석 예정] 김○○, 김○○ 부장판사, 박○○, 박○○, 홍○○ 판사, 김○○ 부장판사, 이○○, 이○○, 문○○, 진○○, 류○○, 이○○ 판사 (2. 24. 03:00 현재)

나. 분석과 전망

사건 경과를 볼 때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 분위기가 감지됨

- 핵심 그룹은 주로 우리법연구회 前, 現 회원이고, 주변 그룹은 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임

▶ 핵심 그룹

[우리법] 이○○, 김○○, 정○○, 이○○, 유○○, 김○○ 부장판사, 박○○, 박○○, 송○○, 홍○○, 이○○ 판사

[인권법] 김○○ 부장판사

▶ 주변 그룹

[우리법] 이○○ 판사

[인권법] 이○○, 이○○, 신○○, 이○○, 문○○, 진○○, 류○○, 홍○○ 판사

조직적 활동 분위기를 추정할 수 있는 징후들

- 송○○ 판사 게시글에 대한 댓글수가 조회수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음



- 송판사와 친분이 있는 일부 판사들이 댓글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예: 전○○ 부장판사에 대한 댓글 작성 독려)
- 송판사의 게시글에서 ‘사법행정위원회’라는 법원행정처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정확한 명칭 사용
 - ‘사법행정위원회’라는 명칭은 사법행정위원회 설립 TF 내부 보고서 이외에는 언급된 적이 없음
 - 송○○ 판사가 행정처 내부 人脈 활용하여 행정처 보고서를 입수한 것으로 추측됨
- 송판사의 글이 코트넷에 게시되고 한참 지난 후 법률신문 칼럼, 경향신문 기사에 송판사의 주장이 보도됨
- 송판사의 발표문에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기재되어 있음

☑ 송○○,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 中 (코트넷 게시글 첨부파일)
“4. 2016년 판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 **판사회의 실질화, 정례화**를 위한 각급 법원 내규 개정 작업 및 직급별 판사회의 정례화
나. **판사회의를 통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출방식 건의 및 위원회 위원 참여**
다. 판사회의의 기관(의장, 간사, 운영위원) 선출방식에 있어서 **직선제 도입 및 후보 참여**
라. **전국법관회의 창립**을 위한 연구 및 기초 작업”

- 사법행정위원회 및 판사회의에 관한 인사모 토론회를 연속하여 개최
 - 1. 29.(금) 1차 토론회에 이어 2. 26.(금) 2차 토론회 개최
- ▣ **조직적 활동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 방안 확립 필요**
 - 현재 핵심 그룹은 ① 코트넷에 건의문 등 게시, ② 언론보도, ③ 토론회 개최 등의 방법을 활용 중
 -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으로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의의가 크게 반감될 우려 존재 ⇨ 치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통해 소수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이 **▲다수 일반 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핵심 그룹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음

2. 핵심 그룹 주장의 함의·파급효과 분석

■ 긍정적 함의·파급효과

- ①위원회 자체에 대한 **事前** **붐업(boom-up)** 효과 기대
 - 위원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임** ⇨ 공식 발표 후에는 붐업 과정이 필요
 - 아직 출범 전이기는 하나, 현재까지는 위원회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부족함** ⇨ 각종 개선 요구는 그 자체로 **적극적·긍정적인 관심을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임**
- ②운영 과정에서 **실질적 참여 기능 극대화** 기대
 - 실제로 선정된 위원은 **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것
 - **법관들 역시 위원회의 운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위원들에게 솔직하고 생생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것**

■ 부정적 함의·파급효과

- ①특정 소수에 의한 **소통 창구 독점** 우려
 - 대체로 소극적인 성향을 가진 법관들의 특성상, 스스로 출마하여 선출되는 법관들은 단순한‘사법행정’에 대한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
 - ‘가장 적합한 사람’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의도가 있는 사람’이 선출되는 결과**가 우려됨 ⇨ 나아가 특정 소수 세력이 위원회를 장악할 우려가 있음
- ②전체 법관 **여론 왜곡** 우려



- 일단 선출된 이후에는 일종의 대의제 기관 ⇨ 위원의 독자적인 견해도 전체 법관의 여론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특히 전체회의에서 누구나 모든 안전에 관하여 토론할 수 있게 되면 위원 하나하나의 개성이 증폭 가능 ⇨ 전체 법관 여론이 왜곡될 우려도 있음
- ③ 사법부 위기 상황 발생 시에 대립·갈등 증폭 수단화 우려
 - 위원회 구성이 왜곡되거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비대해질 경우 오히려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고 이를 증폭시키는 역기능이 우려됨
 - 특히 피드백을 강화하자는 요구는 위기 상황 시에 자칫 대립·갈등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음
- ④ 판사노조 등 법관권익옹호를 위한 세력화의 단초 제공 우려
 - 사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각종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할 측면이 바로 ‘법관권익옹호를 위한 세력화와의 연관성’임
 - 이미 송 판사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에 (방론이기는 하나) ‘판사노조’에 대한 언급이 있기도 함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어떠한 적정선’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이에는 지나치게 비활성화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활성화되는 경우도 포함함)에는 곧바로 법관권익옹호를 위한 세력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⑤ 법원공무원단체(법원노조) 활동에 간접적·부정적 영향 우려
 - 위원회 활동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활성화될 경우 법원공무원단체 활동에도 시너지 효과를 미치게 될 것임 ⇨ 노사협의회에 유사한 정책협의기구 설치·실시 요구가 강화될 우려가 있음

3. [총론] 대응의 전제 조건·유의점

■ ① 요구 수용 시 不可逆性

- 요구의 방향이 ‘사법행정권의 하향 이양’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수용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는 없음에 유의하여야 함

■ ② 한편, 요구 불수용 시에도 요구 방향대로 제도 變遷 가능성

- 위원회 출범 후 특히 까다로운 부분이 위원 인선 작업이고,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할 각급 법원 수뇌부도 이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이에 관한 마찰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속 법원 법관들에게 선택권을 사실상 위임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음
-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는 모양새에서 시작하여 결국 직접 선출도 묵인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
- 출범 첫해에는 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는지 몰라도 해가 거듭될수록 누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③ 지나친 강경 대응 시에는 후폭풍·반작용 우려

-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확장성이 매우 강한 명분을 확보함 ⇨ 이를 강하게 거부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 우려

■ ④ 반면, 현재에는 요구에 대한 관심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음

- 방식 자체가 다소 급진적이고 생경하여 ‘제안 자체’에 대한 격려와 관심이 있을 뿐 ‘요구 관철’에 대한 관심이 크지는 않음
- 과거 서울중앙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직접 선출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법원 내규 개정 과정에서는 대다수 법관들이 무관심 내지 거부감을 드러내었던 전례 참고
- 현재 이미 위원 직선제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담은 글이 게시됨

4. [각론①] 대응 방안

가. 가능한 대응 방안

① 무시 전략

■ 내용

- 법원행정처의 구상만을 無色透明하게 설명
- 핵심 그룹 주장의 요지인 ‘위원의 2/3 또는 적어도 과반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음

☑ ‘무시 전략’에 따른 코트넷 공지문 (예시)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제5조 제1항). 위원의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심급, 권역, 직급 등 전국 법관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적정 규모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고려되었습니다. 한편,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되, 법원행정처장은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장에게 관할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법관에 대한 추천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3항).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의 수를 결정한 다음, 고등법원장이 관할 구역 내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급, 직급 및 성별 등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위원을 추천**하고, **법원행정처장은 고등법원장의 추천을 존중하여 위원을 위촉**하게 될 것입니다.

■ 논거

- 핵심 그룹은 어차피 **소수** ⇨ **多數의 일반 판사**는 판사회의를 통한 선출 주장에 별다른 관심이 없음 ⇨ 그대로 두면 **핵심 그룹의 주장**은 **少數의 목소리**로서 조용히 묻힐 것임
- 현재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의 ‘사법행정에 판사들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으로서 개혁적인 정책
- 핵심 그룹의 주장은 법원행정처의 개혁 정책을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견인하겠다는 것임 ⇨ 핵심 그룹의 주장은 그 성격상 파괴력을 갖기 어려움



- 신○○ 대법관 사태, 서○○ 판사 사태처럼 ‘법관의 독립 침해’, ‘연임 탈락’ 등 다수의 판사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재판, 인사, 사무분담과 관련된 주장이 아님

- 핵심 그룹의 주장에 답변할 경우 **핵심 그룹의 주장을 둘러싼 논쟁이 불필요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 핵심 그룹이 설정한 의제에 **법원행정처가 끌려 다니는 결과** ⇨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의 취지가 크게 반감됨**

■ 부작용

- 핵심 그룹은 자신들의 주장을 법원행정처가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조직적 반발의 수위를 높일 수 있음**
- 핵심 그룹이 조직적 반발의 수위를 높이면서 **법원행정처의 ‘무시’, ‘불통’ 이미지를 강조할 경우 당초 관심이 없던 다수의 일반 판사들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되면서 핵심 그룹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큼**
- 핵심 그룹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국 사례, 논거들을 계속적으로 유포할 경우 **핵심 그룹이 설정한 의제와 프레임에 법원행정처가 계속 끌려 다니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 ⇨ **의제 선점 효과**
-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상황 ⇨ ‘**판사회의를 통한 위원 선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어떻게든 언론에 설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

■ 무시 전략에 따른 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의 코트넷 공지문 게시
- 핵심 그룹은 자신들이 무시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직적 반발의 수위를 높임** ⇨ **법원행정처의 불통 이미지 강조**

☑ 핵심 그룹이 사용할 수 있는 조직적 반발 수단

- 1 코트넷에 게시글 연달아 올리기



- ② **판사회의를 개최**하여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판사들은 판사회의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거나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임의로 선출**
- ③ **연판장 등 공동 성명**
- ④ 경향, 한겨레 등 **진보 성향 언론과의 공조**

- '법원행정처의 불통 이미지'에 공감하는 상당수의 일반 판사들이 핵심 그룹 지지
- 위기 상황 도래
-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핵심 그룹의 주장 일부 수용

② 일부 설명 전략

■ 내용

- 원칙적으로는 법원행정처의 구상을 無色透明하게 설명
- 다만, 핵심 그룹이 주장하는 '위원의 2/3 또는 적어도 과반수는 각급 법원 판사회에서 선출'을 받아들일 수 없는 논거를 우회적·간접적인 방식으로 설명

■ 논거

- 핵심 그룹은 어차피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목표는 ① 다수의 일반 판사들이 심리적 동요를 일으켜 핵심 그룹의 지지를 보내는 상황 방지 및 ② 부정적 언론보도의 확산 방지
- 법원행정처가 핵심 그룹의 주장에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답변을 해 줄 경우 법원행정처의 '불통', '일방통행' 이미지는 완화될 수 있음 ⇨ 핵심 그룹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더라도 다수의 일반 판사들이 핵심 그룹을 지지할 가능성 낮아짐 ⇨ 핵심 그룹의 고립화

■ 부작용

- '무시 전략'의 논거와 동일



- 핵심 그룹의 주장에 답변할 경우 **핵심 그룹의 주장을 둘러싼 논쟁이 불필요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 핵심 그룹이 설정한 의제에 **법원행정처가 끌려 다니는 결과** ⇨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의 취지가 크게 반감됨**

▣ 일부 설명 전략에 따른 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의 코트넷 공지문 게시
- 핵심 그룹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조직적 반발 시도
 - ① 코트넷에 게시글 연달아 올리기, ② 판사회의 개최하여 건의문 채택 또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석할 대표자 선출, ③ 진보성향 언론과의 공조
 - 법원행정처가 핵심 그룹의 주장에 우회적·간접적이거나 응답한 이상, 핵심 그룹도 연판장 등 공동 성명을 할 명분이 없음
- 다수의 일반 판사는 핵심 그룹의 주장에 무관심
 - 법원행정처의 응답과 설명이 일정 부분 논쟁은 만들 수 있지만, 법원행정처의 ‘친절한 이미지’가 구축됨으로써 다수의 일반 판사들이 심정적으로 핵심 그룹을 지지하게 되는 현상은 방지할 수 있음

나. 검토 의견 ⇨ ② 일부 설명 전략

▣ 법원행정처의 ‘친절한’ 이미지 구축 & ‘불통’ 이미지 강화 방지

- 다수의 일반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불통’ 이미지에 대한 반감으로 소수의 핵심 그룹에 심정적 지지를 보내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음 ⇨ 소수 핵심 그룹의 고립화 유도

▣ 핵심 그룹의 문제제기를 통한 논쟁 확대는 오히려 불업(Boom-up)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핵심 그룹의 문제제기는 과도하지 않는 한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적극적·긍정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일부 설명 전략을 취하는 한 핵심 그룹의 문제제기가 과도한 방향으로



확대되어 다수 일반 판사의 공감을 얻는 방향으로 가기는 힘들 것임

5. [각론②] 일부 설명 전략에 따른 '대외적 설득 논리'

① 법관평의회 등 독일 사례를 원용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 공지문에 포함될 설득 논리(예시)

▶ 사법행정권한이 행정조직인 법무부에 귀속되어 독립한 사법행정조직 체계를 갖지 못한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는 독립된 사법행정조직을 갖추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는 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우리와 유사하게 독립된 사법행정조직을 갖추고 있는 미국 연방법원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사례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② 미국연방사법회의 같은 전국법관회의를 설치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 공지문에 포함될 설득 논리(예시)

▶ 미국의 연방사법회의는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13명은 항소법원장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1명은 국제무역법원장이 맡으며, 나머지 12명은 Federal Circuit을 제외한 12개의 Circuit에서 각 Circuit별로 1명씩 선출된 지방법원 판사가 맡게 됩니다. **연혁적으로 미국의 연방사법회의는 연방항소법원장들로 구성된 회의체에 지방법원 판사들을 참여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현재 전국법원장회의가 미국의 연방사법회의와 가장 유사한 조직**이므로, **전국법원장회의를 미국의 연방사법회의와 유사하게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등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개편 방안은 **대법관회의와의 관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들을 초래**하므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③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 공지문에 포함될 설득 논리(예시)

▶ 미국연방법원의 경우 연방사법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심도 깊은 토론 없이 사실상 그대로 추진하는 의례적인 행사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의 모습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은 미국 연방법원의 상임위원회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 25개 상임위원회의 약 300명에 이르는 위원들을 미국연방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고등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한편,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하려면 위원의 수가 적정 규모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모든 법원장에게 위원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적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권역, 심급, 직급, 성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므로, 추천권자는 고등법원장에 한정하였습니다. 실제 운용 과정에서 고등법원장은 소속 고등법원의 법관뿐만이 아니라 관내 모든 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위원을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고등법원장이 필요하다 고 판단한다면,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원 참여를 희망하는 법관들의 자원 또는 추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초기 성과 분석 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논리

☑ 공식적 명분·논리

- ▶ “무엇보다도 위원회 제도의 조기 정착·연착륙을 위해서 현 시점에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실천 가능하고 효율적인 안정적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양하고 실질적인 여러 시도는 위원회의 초기 성과를 관찰·분석한 후에도 늦지 않을 것임”

- 어떠한 이념적·실질적 논리를 제시하기보다 현실론과 방법론의 측면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을 것임
- 실제로 대부분의 법관들 역시, 위원회 출범 자체가 사법행정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최초에는 가급적 부작용이 덜한 방법을 택하는 데에 대하여 지지할 것임

6. 향후 계획

▣ 2. 25.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 코트넷 공지문 게시

- 2. 26. 개최 예정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 전에 공지문 게시 필요

▣ 2. 26. 통합실무지원단 구성

- 구성
 - [단장]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법원문화개선위원회]
 - 최○○, 문○○ 심의관, 조○○ 기획조정심의관, 기획제2심의관
 - [재판제도발전위원회]



■ 김○○(민사), 한○○(형사), 권○○(가사) 심의관

- [코트넷 전용 공간 설치]

■ 임○○ 정보화심의관

● 역할

- 사법행정위원회 안건 발굴

- 사전점검 항목 추출 및 준비

- 내부 관심도 제고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끝>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2016. 3. 15.

1. 문제점

- ‘인사모’ 를 중심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명백히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여 비정상적 운영을 하고 있음
-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회원들은 ① ‘인사모’ 의 활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거나(회원으로 가입은 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누가 ‘인사모’ 에 소속되어 있고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관하여 관심이 없는 소극적 성향의 부류), ② ‘인사모’ 를 중심으로한 비정상적 연구회 활동이 연구회 안에서 연구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

2. 대응방안

- ‘인사모’ 의 자발적 해산 방안
 - 회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인사모의 자진해산을 권유함이 가장 적절하고 현실적임 → 회장의 자진해산 권유과정에서 다수 일반회원이 인사모 활동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우려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 있음
 - 운영위원회 결의, 총회 결의 등에 의한 폐지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실현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
 - 행정처 차원의 인사모 폐지권고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책으로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함이 타당
 - ‘언론 활용을 통한 거리낌 증대로 말미암은 폐지’ 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 규정’ 방안은 역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하지 않음
- 언론이 그 기회를 활용하여 ① ‘민사판례연구회’ vs ‘우리법연구회’



와 같은 이념성 논란을 재점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② 그 과정에서 이념성과 사실상 특별한 관련 없는 내부 연구회(예; ‘민사집행법연구회’ 등)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이념적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언론 framing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 있음 → 법원과 법관 전체의 신뢰 추락 가능성

■ 연구회 정상화 방안

- 대다수 일반 회원은 순수한 학문적 관심과 ‘국제인권’에 대한 관심에 따라 가입한 회원들임
 - ❖ 이념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고, 특히 36기 이하의 법관들은 이념적 편향성이 적고, ‘국제법’ 등에 대한 관심에 따라 연구회에 가입한 법관들이 많음
- 다만, 대다수 법관들이 연구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특정한 이념적 지향성이 있는 법관들이 연구회의 운영을 주도하는 형국
 - ❖ 따라서 ‘인사모’ 폐지 후 연구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연구회의 회칙상 회장과 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회장과 간사를 통한 연구회 정상화 시도가 가장 바람직함
 - ❖ 현 회장 및 간사를 통하여 일반 회원의 우려, 행정처의 우려, 국제인권법 연구회 전체가 부당하게 낙인찍힐 가능성 등을 전달하고 자체적 해결 노력을 권유할 필요
- 현실적으로 연구회 활동 평가에 따른 예산의 차등지급 등의 방안은 연구회 운영의 정상화를 유도하기는 어려움
 - ❖ 예산이 적게 배정되더라도 ‘인사모’ 등의 활동을 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내부적으로 코트넷 커뮤니티를 통해 연구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공식적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으나, 어차피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는 회원들 역시 ‘인사모’ 운영과 관련 있는 핵심 회원들이므로 별다른 호



응을 얻지 못할 가능성 있음

- 실제로 대다수 회원은 그러한 문제제기에 찬동할 것이나 평소 소극적 성향 때문에 ‘댓글’ 등을 통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임**
- 반면에 그러한 문제제기에 **핵심 회원들만 강력 반박하는 댓글을 달 가능성 高** → 현재 상황의 고착화 내지 악화 우려

■ 장기적 대응방안

-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더라도 **동일·유사한 문제가 국제인권법연구회든, 그 밖의 연구회든 집행부나 연구회를 주도하는 핵심 회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시 발생할 수 있음**
- 재판에 관련된 연구회도 다룰 수 있는 주제와 쟁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언제든지 유사한 문제 발생을 상정할 수 있음
- 예컨대, ①국제거래법연구회에서 한미FTA 관련 이슈 등을 통하여 사법행정, 외교 영역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②형사법연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병역범위반 관련 이슈를 통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으며, ③젠더법연구회에서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의 성차별 문제제기 등을 할 수도 있음
- 문제의 핵심은 ‘전문분야연구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회 임원진의 구성에 법원행정처가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것임
- 따라서 이 부분도 향후 심도 있는 검토 필요함. 다만, 위 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최소한 법원행정처에서 커뮤니티 활동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신설 필요 ⇨ 매년 활동계획을 보고하도록 한 뒤 ‘승인’, ‘수정요구’ 등 회신
- 학문 연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제기가 우려되나, 개인적인 학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 커뮤니티에서의 활동방안’에 관한 적절한 범위의 관리로서 국가예산을 지급하는 이상 심사권한을 보유함이**



상당

- **중복가입 금지원칙 적용 강화, 연구회별 회원수 제한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끝>**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2016. 03. 10.

인사총괄심의관실

I. 연구회 개요

■ 2011. 8. 31. 창립

○ 초대 회장 김○○ ○○지방법원장(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 지난 민○○ 대법관 후임 제청 과정에서 김○○ 부장이 대법관 후보로 천거

※ 김○○ 부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원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신○○ 대법관 사태 때 전국 법관 최초로 사퇴를 주장하는 글을 코트넷에 게시하였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요 멤버임 ⇨ 개인 명의로 천거하였으나, 실질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그룹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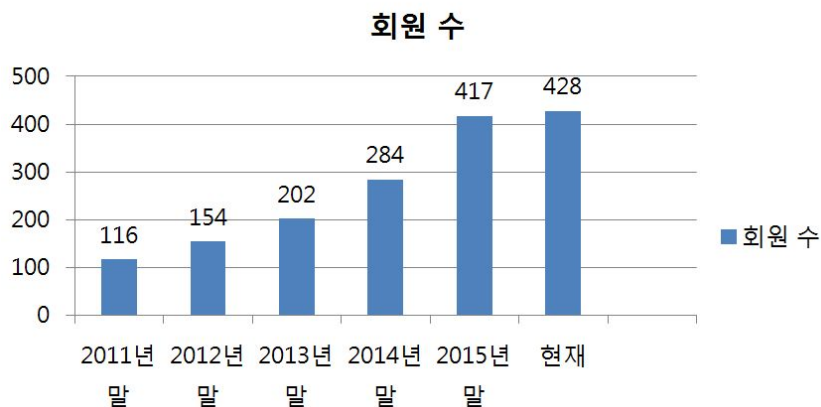
○ 현 회장은 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2011. 10. 21. 회칙 제정 (주요 내용은 첨부1 참조)

■ 2016. 3. 8. 현재 회원 수 428명

○ 법원장 1명, 고법부장 11명, 지법부장 115명, 평판사 301명

○ 연도별 회원 수 증가 추이 ⇨ 13년 말 대비 2년 만에 2배 이상 급성장



- 회원수가 15개 전문분야연구회 중 2012년 14위에서 2015년 5위(중복가입 가능한 연구회 제외하면 3위)로 급상승

○ 연도별 가입인원

기간	가입인원	20기 이상	21~25기	26~30기	31~35기	36~40기	41기 이하
2011년 (창립)	115명	3	7	41	50	14	
2012년	38명	0	2	8	8	16	4
2013년	48명	0	3	7	17	20	1
2014년	82명	5	3	16	30	22	6
2015년	132명	1	12	15	27	60	17
2016년	11명	0	1	3	2	4	1

- 2014년부터 가입인원 급증 추세 → 인맥을 활용한 다단계식 회원 유치 방식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5년에 36~40기의 젊은 판사들의 대거 가입 주목됨

○ 평판사 기수별 분포

	31기	32기	33기	34기	35기	36기	37기	38기	39기	40기	41기	42기	43기	계
회원수	37	34	23	20	22	27	30	31	26	22	22	6	1	301
기수현원	152	169	166	148	146	149	164	163	154	131	137	32	9	1,720
비율	24%	20%	13%	13%	15%	18%	18%	19%	16%	16%	16%	18%	11%	17%

- 평판사 현원 대비 17%로서 점유율 높은 편
- 31기의 경우 24%로서 4명 중 1명꼴
- 임관 후 만 2년 된 42기의 비율이 18%로 높은 점 눈에 띄

■ 핵심 그룹 (추정)

- 간부진,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창립멤버 등이 핵심 그룹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 (첨부2 참조) → 주로 우리법연구회 회원 또는 운동권 경력 있는 법관들임

II. 문제상황

1. 비정상적 운영 (전문분야 이탈 ⇨ 사법행정 개입)

- 국제인권법과 무관한 사법행정 논의들을 ‘인권법’ 명목 하에 진행
 - 인사모의 상고법원, 합의부 운용 등 논의가 대표적 사례
 - 핵심 회원인 송○○ 판사가 2016. 2. 코트넷에 게시한 ‘판사회의 활성화’ 관련 문건은 인사모 논의 결과물로 알려짐
- 외연 확대로 추동력 및 자신감 확보됨에 따라 이탈 가속화
 - 연구회가 사법부 내 대표적인 연구회로 자리 잡자 박○○ 판사의 제안으로 2015. 7. 핵심 회원들이 주축이 된 인사모 발족하여 인권법과 무관한 사법제도 논의 시작 ⇨ 사법행정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냄
 - 2015. 8. 상고법원 도입에 관하여 논의 후 투표 결과 다수가 회의적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경과보고 형식으로 연구회 게시판에 게시
 - 대법원이 사법행정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자 송○○ 판사가 2016. 2. 판사회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취지의 글을 코트넷에 게시 ⇨ 인사모 연구결과물로 추정
- 이○○ 대법관 후임 제청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가능성 높음
 - 인사모에서 2015. 10. 대법관 후보 추천절차에 대해 논의하려다 연기
 - 연구회 회원인 문○○ 부장, 박○○ 판사(인사모 총무) 등은 이전에도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코트넷에 공개적으로 글을 게시한 바 있음
 - 핵심 그룹에서 김○○ 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하거나 측면에서 지지할 가능성 농후함

2. 법관 사회 내 과도한 영향력 확대

- 주제의 시의성 + 탈권위 + 인맥 활용 포섭 ⇨ 젊은 법관들에게 어필
 - 창립된 지 불과 4년 만에 회원 수 400명이 넘는 대형 연구회로 성장
- 핵심 그룹에 한정된 사고가 법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

- 사법부 관료화 비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판사회의 활성화 등
- 인사모를 연구회 내 소모임으로 발족한 것은 치밀한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

3. 소수 주장의 지지기반 착시 효과

- 핵심 그룹 주장이 연구회 이름 또는 다수 법관 지지로 포장될 가능성
- 송○○ 판사의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게시물 및 댓글이 대표적 사례
 - 송○○ 판사의 게시물에 다수 법관이 지지 댓글 ⇨ 일부 언론 보도
 - 실상 댓글 다수는 이미 견해를 같이 한 핵심 회원들의 것으로 파악
 - 당시 인사모 핵심 회원 13명 중 11명이 댓글 게시 (송○○ 판사 포함 시 12명)
 - 댓글 28개 중 22개가 연구회 회원이 게시한 것

4. 위기상황 초래 위험성

- 돌출행동으로 보수언론의 '법원 때리기' 유발 우려
 - 2015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최○○ 부장(운영위원), 황○○ 판사는 모두 연구회 회원임
 - 대법원 판례를 정면에서 비판하며 긴급조치 배상판결을 내린 김○○ 부장은 연구회 핵심 회원이고, 마○○ 부장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음
 - 연구회 대외협력팀장인 이○○ 판사는 최근 연구회 게시판을 통해 2016. 3. 19. 개최 예정인 우리법연구회의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에 대해 안내 및 홍보함

5. 법원 내 사조직 형성 우려

- 끈끈한 유대관계를 기초로 서로 끌어주는 법원 내 사조직 형성 우려
- 폐쇄적 성격의 사적 모임 활성화로 비회원 법관들의 소외감 증대

III. 접근방향

1. 근본원인 : 핵심 회원의 연구회 주도

- 성향과 목표를 공유하는 핵심 회원들이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연구회를 창설한 것으로 추정
- 이들 핵심 회원들이 연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논의주제와 과정을 지배하며, 우리법연구회, 운동권 활동 경험 등을 접목하여 조직적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경로(코트넷, 판사회의 등)로 목표달성 위해 노력

2. 해결책 : 주도권 회수 ⇨ 인사모 폐지 + 연구회 정상화

가. 인사모 : 폐지 vs 관리 vs 방치 ⇨ 폐지

- 인사모는 문제상황의 집약체이자 핵심
 - 인사모 결성(2015. 7.) 전까지 연구회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상황은 발생x
 - 최근의 일련의 돌출행동은 대부분 인사모 회원들이 주도 ⇨ 컨트롤타워 역할 의심됨
- 인사모 활동은 국제인권법 연구와 무관 ⇨ 근거 없고 부적절
 - 회장(이○○ 실장)도 인사모 면담 시 이를 지적 (2015. 9. 14.)
 - 비핵심 회원 및 법관 다수도, 인사모 주장의 당부와는 별개로, 인사모가 연구회의 분과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은 공감할 것
- 인사모를 커뮤니티 안에 둘 경우 득보다 실이 큼
 - 공식 커뮤니티 게시판의 게시만으로도 언론 보도 가능성 높고, 이 경우 '법원의 공식 커뮤니티에서 논의되었다'는 관점에서 보도될 가능성 있음
 - 인사모 폐지 후 커뮤니티 밖에서 동일 취지로 주장하더라도, 일부 법관들의 개별적 돌출행동으로 인식되어 행정처의 부담 적고 파급력도 낮을 것
 - 인사모의 문제제기가 연구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비

핵심 판사들 일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커뮤니티 안에 있다고 해서 활동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기대×
- 커뮤니티 안에 있는 경우 게시판을 통해 활동내역의 일부 확인 가능
but 어차피 공개 범위는 재량에 달려 있어 실질적 의미는 크지 않을 것

나. 연구회 : 폐지 vs 관리 vs 방치 ⇨ 관리

- 인권법 분야에 대한 순수한 학술적 연구는 적정하고 필요
- 회원 다수는 인권법에 대한 관심 또는 선배 추천으로 가입하였을 뿐
- 연구회를 폐지할 마땅한 명분도 없음 ⇨ 무리한 폐지 시 오히려 동정여론 및 행정처에 대한 반감만 확산될 가능성
- 적정하게 관리하여 정상화시키는 것이 해결책으로 판단

IV. 구체적 방안

1. 인사모 폐지 방안

- 이○○ 대법관 후임 제청절차 시작 전에 폐지 필요
- 인사모만의 선별적 폐지보다는 연구회 전반 및 분과 재편 차원에서 접근
 - 인사모만 폐지 시도 시 반발 우려 大 ⇨ 계기와 명분 필요

가. 명분

- [명분①] 행정처 차원에서 법원 커뮤니티의 전반적 개편 계획 공시
 - 전문성 강화 위해 연구회 세분화
 - 연구회별로 부적절(전문분야 이탈), 중복, 비활동 분과 등 재정비
 - 연구회별 개편 계획을 평가하여 예산의 차등 지급 등 실시
- [명분②] 다수 회원들의 의견 수렴 결과임을 표방
 - 인사모의 부적절성이 다수 회원들의 의사임을 표방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내

세우는 핵심 회원들 입장에서 거부할 명분 적을 것

- 사전에 회장 주도로 비핵심 다수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볼 필요 있음

■ [명분③] 언론의 공격 가능성 활용

-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인사모에 대해 취재 중(특히 우리법연구회와의 관련성)으로, 연구회와 법원 전체의 위기상황 초래 가능성 언급
- 보수언론에서 경향신문의 2016. 2. 22.자 ‘침묵 깬 판사들, 사법행정 참여 위원 우리가 뽑자’ 기사의 취재원 판사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부각
 - 실제로도 위 기사는 인사모 회원이 기사 내용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됨
 - 경향신문 인터넷 2016. 3. 6.자 [기자메모]“사법행정 참여 법관 직접 선출 외면한 법원행정처” 기사 내용도 마찬가지로 추정됨

<참고 : 언론 활용 방안>

- 보수 성향 언론사에 아래 취지의 정보를 제공하여 인사모 비판기사를 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 우리법연구회 핵심 멤버들이 주축
 - 최근의 긴급조치, 병역법위반 등 일련의 튀는 판결 주도
- 일종의 ‘제살 도려내기’로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임
- 명분의 제공 측면에서는 최선이나 법원 전체가 비난받을 우려 ⇨ 신중한 접근 필요

나. 폐지 방식

■ [1안] 자발적 해산

- 최선책 but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
- 성공 여부는 **명분의 설득력과 회장의 리더십**에 달려 있음
- 사전에 비핵심 회원들 다수의 수렴된 의견이 확인된다면 적잖이 주효할 것
- 김○○ 법원장을 통한 자제 당부도 검토 가능 ⇨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의 잡음을 염두에 두고 전술적으로 자제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2안] 운영위원회 결의로 폐지

- 핵심 회원들이 운영위원회를 장악한 현 역학구도 하에서 기대 어려움

- 현 운영위원 임기 종료 후 **운영위원 다수를 확보**(아래 주요 의사결정 라인 확보 방안 참조)한 뒤 시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합당

☞ 다만 이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인사모 폐지가 지연되는 문제 있음

■ [3안] 총회 결의로 폐지

- 인사모가 연구회 분과로서 어울리지 않음은 다수 법관의 공감 가능
- 다만 존치로 결의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감 대폭 증가
- 총회 결의 시에는 **비핵심 회원들의 적극 참가 유도** 필요 (전자투표 활용 등)

■ [4안] 행정처 폐지권고 및 회장 수용

- 일반적 관리권한의 발동으로 커뮤니티의 목적 외 활동에 대해 규제
- 다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함이 상당

■ [검토] 1차로 자발적 해산 시도 + 2차로 운영위원회 장악 후 폐지

- 1차로 회장의 자발적 해산 권유
 - 사법행정은 인권법 연구와 무관함 지적 + 사법행정위원회 등을 통한 참여 권유
- 해산 불응 시 2차로, ① 회장은 인권법 연구와 무관한 활동의 자제를 당부하고, ② 이후 운영위원 교체 시점에 운영위원 다수를 확보한 뒤, ③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인사모를 폐지
- 어떤 경우든 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

2. 연구회 정상화 방안

가. 연구회 내 주요 의사결정 라인 확보

■ 회칙 상 주요 의사결정은 회장, 운영위원회, 총회에서 결정

■ 핵심은 의사소통 원활한 **고법부장이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임

- 핵심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되는 경우 연구회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 ☞ 직권 폐지 등 최후수단 불가피
- 정치력·지도력 있고 고집과 강단 있는 분일 것

- 부장심의관 이상의 행정처 경력은 없는 편이 좋을 것
 - 행정처의 연구회 접수 시도라는 반발 가능성 있음
 - 동시에 그와 반대로 연구회가 행정처의 지원을 받는다는 오정보 제공 우려도 있음
 - 참고로 만일 연구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법부장의 회장 선임이 제지된다면 연구회의 위상 하락 효과도 기대 가능(다만 핵심 회원 또는 그 동조 회원 중에 고법부장 이상 있는 것으로 보여 실제 가능 여부는 예측 어려움)

■ 운영위원 과반을 평균적 성향의 판사로 구성

- 운영위원은 회장이 간사·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명(회칙 5조 2항)
- 반발 적도록 평균적 성향으로 인정받는 판사들을 과반수 임명
- 동시에 운영위원 1~2명은 의사소통 가능한 법관 진입

■ 운영위원 과반 확보 전까지는 현 체제 용인 불가피

- 운영위원 과반 확보 전 재편 시도 시 후임 회장 선임 과정에서 곤란 발생

■ 그 외 의사소통 가능한 지법부장 및 평판사들의 가입 및 활동 지원

나. 부정적 성격 부여 ⇨ 비핵심 그룹의 이탈 유도

■ 비공식 경로로 '문제 있다'는 지적 계속 ⇨ 법관 사회 내 거리낌 확산

■ 가장 확실한 성격 규정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정의하는 것

- 기존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비판은, 사법부의 이념화, 정치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소위 '튀는 판결'을 주도한다는 비판 ⇨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사실 자체로 판결에 대한 신뢰 추락 가능
- 연구회가 대법관 제청 등 민감한 주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

■ 법원장, 수석부장, 일부 법관 등 통해서 일선 법관들에게 우려 전달

■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앞선 언론 활용 방안이나 신중한 접근 필요

다. 연구회의 주제 및 구조의 간소화

■ ‘국제인권법’은 지나치게 광범위 ⇨ 구체적이고 협소한 아젠다로 대체

- 주제가 좁을수록 활동영역 축소 ⇨ 난민, 인권조약 등으로 한정
- 법원 커뮤니티 재편 과정에서 축소를 권고하고, 제외된 소주제 일부는 타연구회로 이관

■ 연구회 구성이 지극히 조직적·전략적 ⇨ 회장, 간사, 운영위원으로 간소화

- 현 구성은 운동권 조직을 연상케 하는 전략적, 전술적 구조로 보임
- 회장 등 간부진 23명, 보조인력 33명, 합계 56명으로 대규모 집행부 운영
- 회장, 운영위원, 간사, 총무(팀장), 분과위원회, 편집위원회, 지역위원회의 7개 단위로 구분되고, 총무(팀장)는 학술, 기획, 홍보, 정책, 대외협력으로, 분과는 법관론, 독서모임, 인산회, 난민, 표현자유, 소수자, 문화예술, 인사모로, 지역위원회는 광주전남, 대전, 부산, 서울중앙, 서울남부, 인천, 수원으로 세분화

라. 경쟁 연구회 활성화

■ 탈권위적 운영, 소규모 분과를 통한 상시 모임 강화 등 인권법연구회의 장점 벤치마킹

■ 인권법연구회의 주제 일부를 이관받는 한편, 참신한 주제들 발굴

■ 고법부장 이상 법관들, 현직 행정처 실장, 부장심의관, 부장연구관, 기타 선발성 인사 경력 있는 법관들의 대거 배치 및 적극 활동 ⇨ 젊은 법관들의 관심 유도

■ 커뮤니티 예산 지원 ⇨ 뒤풀이, 1박 2일 행사 등 활성화

■ 인사모 폐지, 부정적 성격 규정과 함께 진행 시 효과 배가 기대

마. 법원 커뮤니티 재편

■ 모든 전문분야연구회의 활동을 공개로 전환

- 근거 : ① 비공개 이유 없음 ② 일선 법관들의 자료검색 등 접근 필요 ③ 연구회 활동이 활성화될수록 비회원인 법관들의 소외감 증대

- 연구회 활동이 공개되면 연구회 본연의 전문분야와 무관한 이슈를 연구회의 틀 안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기대
-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예규 9조)가 아래 커뮤니티 활동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연구회들의 목적 외 활동 유무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 커뮤니티 활동의 관리 강화

- 연구회 운영성과의 평가항목으로 '활동의 목적 적합성' 항목을 추가
 - 인사모와 같이 연구회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은 감점사유가 될 것
- 매년 운영성과 평가를 엄격히 하고 그에 따라 예산 차등 집행
 - 인권법연구회의 2015년 예산배정 순위는 15개 연구회들 중 4위로 높은 수준
 - 인사모 등 존치 시 예산배정 대폭 감소할 것 ⇨ 세미나, 뒤풀이, 학술대회 등 제약

■ 중복가입 금지원칙 적용 강화

- 전문분야연구회를 재판실무연구회와 비재판연구회로 구분
 - 비재판연구회는 중복가입을 원천 금지하고, 재판실무연구회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무분담 담당시기에만 중복가입을 허용하되 사무분담 변경되면 즉시 탈퇴 처리
- 경쟁 연구회 육성, 부정적 성격 규정이 선이행된 이후에 중복가입 금지를 강화하여 인권법연구회 탈퇴를 유도
 - 성급한 중복가입 금지 강화는 인권법연구회로의 집중도만 높일 수 있음
- 현 전산 시스템 상으로는 중복가입이 금지되는 연구회의 경우도 시습만 승인하면 중복가입 가능 ⇨ 전산적인 개선 필요

■ 연구회별 회원수 제한은 도입 유보

- 전문분야연구회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법관별로 연찬을 희망하는 분야의 연구회에 가입하는 것임 ⇨ 회원수 제한으로 가입 불가능은 공감 얻기 어려움

바. 핵심 회원에 불이익 부과

- 인사모 등 핵심 회원에게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 부과 ⇨ 법관 사회 내 거리낌 증가

- ▣ 다만 간접적 방법이고 우수자원 활용에 제약 초래 ⇨ 개별적이고 신중한 접근 필요

첨부1. 예규 및 회칙 규정 일부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3조 (회원)

- ② 법관은 2개 이상의 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그 예외가 되는 연구회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재판부 소속 법관은 관련 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5조 (임원)

- 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 ④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 (총회)

- ① 연구회는 연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총회에서는 회장의 선출 및 결산보고 기타 연구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칙

제1조 (목적)

이 연구회는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와 논문발표, 세미나, 국제교류 등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그 연구성과를 재판실무에 반영하여 국민과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총회)

- ② 회원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이 소집하지 않는 경우 간사 또는 운영위원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③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의 개정
 - 2. 회장, 간사의 선출
 - 3. 결산보고
 -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임원)

- ① 연구회는 회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고, 필요할 경우 5인 이내의 총무, 6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회장과 간사는 총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총무와 운영위원은 간사 또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④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간사와 총무 및 운영위원은 연구회

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 ① 연구회는 주요 안건의 결정을 위하여 회장, 분과위원장, 편집위원장, 간사, 총무,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의 요구로 소집되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안, 기타 총회의 의결사항 이외의 안건을 결정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16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구성(2016. 3. 1.기준)

			업무	꾸리미	비고
회장	이규진	18			
운영위원 (6) 가나다순	이	16	연구회 운영 방안 제시, 논의		
	고	23			
	최	28			
	박	30			
	방	33			
	진	39			
간사	정	27			
총무(팀장) (5) 가나다순	나	32	학술	이 (34), (35), 유 (39), 강 (41), 최 (41), 박 (42), 박 (43)	팀장에게 팀 구성 자율성 보장
	김	32	기획	윤 (34), 김 (36), 박 (37), 이 (37), 홍 (38), 공 (40), 조 (40), 김 (37)	
	전	36	홍보	윤 (38), 문 (37), 김 (42), 김 (40)	
	이	31	정책	김 (30), 송 (38)	
	이	37	대외협력	정 (39), 김 (42), 서 (39), 이 (41)	
분과위원회 (소모임) 위원장 무순	강	35	법판론	오 (39)	○분과위원회의 수는 제한 없음 ○5인 이상 구성, 신고 시 승인 ○위원장, 꾸리미는 자체 협의 결정
	강	35	독서모임	박 (39)	
	임	25	인사회	오 (39)	
	안	34	난민	하 (38)	
	김	32	표현의 자유	류 (40)	
	김	25	소수자 인권	윤 (38)	
	강	35	문화예술	여 (42)	
김	30	인사모	박 (31)		
편집위원회 위원장	박	36	재판자료집 발간	임 (32)	○위원장, 편집위원은 운영위 거쳐 임명 ○위원장에게 구성 및 운영 자율권 보장
지역위원회 (지역분과위) 위원장 무순	송	24	광주전남	공 (40)	○지역위원회의 수는 제한 없음 ○5인 이상 구성, 신고 시 승인 ○위원장, 꾸리미는 자체 협의 결정
			대전	조 (40)	
	김	29	부산	김 (37)	
			서울중앙	○매뉴얼모임: ○점심모임:	
		서울남부			

2. 인사모 회원

가. 최초 주도

순번	법관	기수	소속	비고
1	김○○	24기	서울중앙	·인사모 총무(사퇴) ·우리법연구회 회원
2	이○○	26기	서울동부	·인사모 최연장자(좌장격)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 ·우리법연구회 동조
3	이○○	27기	수원	
4	이○○	27기	서울고	·우리법연구회 회원
5	정○○	27기	연수원	·우리법연구회 회원
6	김○○	30기	광주	·인사모 분과위원장 ·우리법연구회 회원
7	김○○	30기	대구	
8	김○○	30기	전주	·연구회 창립 주도 ·우리법연구회 동조
9	박○○	31기	서울중앙	·인사모 총무 ·15.04.16. 코트넷에 박○○ 대법관 후보자 사퇴 요구 게시 ·우리법연구회 회원
10	박○○	31기	서울고	·인사모 결성 최초 제안 ·우리법연구회 회원
11	신○○	31기	서울중앙	
12	이○○	31기	대법원	
13	송○○	34기	서울중앙	·16.02.01. 코트넷에 법관의 사법행 정참여 제도화 건의문 게시 ·우리법연구회 회원

나. 후속 가입

순번	법관	기수	소속	비고
1	김○○	25기	인천	·14.12.15. '횡성한우' 판결 비판으로 정직 2월 ·14.09. 원세훈 무죄판결에 대한 비판글 게시
2	이○○	32기	서울중앙	·사법행정 책임자들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는 2015년 평정 기재
3	류○○	40기	춘천	·15.05.17. 박○○ 판사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사퇴 요구 게시글에 대한 지지글 게시

다. 동조그룹(추정)

순번	법관	기수	소속	비고
1	사○○	23기	서울중앙	·16.02.22. 의원면직 ·우리법연구회 회원
2	문○○	37기	서울중앙	
3	홍○○	38기	서울중앙	

라. 창립회원

순번	법관	기수	가입일	현 소속	비고
1	김○○	14	2011-08-31	대구	
2	김○○	15	2011-08-31	춘천	우리법연구회 회원
3	김○○	22	2011-08-31	서울중앙	우리법연구회 회원
4	김○○	24	2011-08-31	서울중앙	우리법연구회 회원
5	문○○	26	2011-08-31	서울남부	우리법연구회 회원
6	이○○	26	2011-08-31	서울동부	우리법연구회 동조
7	이○○	26	2011-08-31	서울동부	
8	이○○	26	2011-08-31	수원	우리법연구회 회원
9	이○○	27	2011-08-31	서울고등	우리법연구회 회원
10	김○○	28	2011-08-31	대전	
11	선○○	28	2011-08-31	수원	
12	박○○	28	2011-08-31	수원	우리법연구회 회원
13	허○○	28	2011-08-31	의정부	
14	최○○	28	2011-08-31	인천	
15	이○○	29	2011-08-31	광주	
16	최○○	29	2011-08-31	서울가정	
17	신○○	29	2011-08-31	청주	
18	이○○	30	2011-08-31	대법원	
19	김○○	30	2011-08-31	부산가정	
20	한○○	30	2011-08-31	부산	
21	김○○	30	2011-08-31	전주	우리법연구회 동조
22	김○○	31	2011-08-31	대전가정	
23	강○○	31	2011-08-31	서울중앙	우리법연구회 회원
24	이○○	31	2011-08-31	서울중앙	
25	박○○	32	2011-08-31	대구가정	
26	이○○	32	2011-08-31	서울중앙	
27	정○○	33	2011-08-31	서울남부	우리법연구회 회원
28	김○○	33	2011-08-31	서울중앙	
29	서○○	35	2011-08-31	춘천	
30	전○○	36	2011-08-31	수원	우리법연구회 회원
31	남○○	39	2011-08-31	전주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2018. 6. 5.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3. 12. 이완구 총리 대국민담화 발표 ⇨ '부정부패와 전면전' 선언

☑ 주요 내용

▶ "저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 내겠습니다."

■ 정국에 상당한 파장 ⇨ 의미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 있음

- 향후 BH와 여권의 움직임과 정국의 향방을 판가름할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

■ 특히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예측 ⇨ 대응 방향 검토 필요성이 큼

- 주요 사법정책 추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향 마련 ⇨ 적극적·소극적 대응 방향 모색

2. 일반적 의미 분석

가. 배경

■ 최근 상황 ⇨ 집권 1~2년차에 가시적인 성과·업적을 거의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지지율 하락세 계속

- 불안감·절박감 ⇨ 가시적 성과를 쌓기 위한 '골든타임' 선언
 -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 '4대 부문 구조개혁' 선정
- 하지만 국정 난맥상은 계속



- 이완구 총리 지명 과정에서의 혼선, 담뱃값 인상 논란, 연말정산 후폭풍

나. 정치적 합의

▣ 조기 레임덕 방지를 위한 '집권 3년차 어젠다'

- 최근 BH는 역대 정권의 경험에 따라 조기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집권 3년차 어젠다'를 모색해왔음

☑ 역대 정권의 조기 레임덕 방지를 위한 '집권 3년차 어젠다' 선포 사례

- ▶ 문민정부 ⇨ 역사바로세우기 운동 ▶ 국민의정부 ⇨ 남북정상회담 추진
- ▶ 참여정부 ⇨ 대연정 제안 ▶ MB정부 ⇨ 4대강 사업 강행 선언

- 하지만 획기적인 아이템은 찾지 못하였고, 대신 그 역할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된 '4대 부문 구조개혁' 이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음 ⇨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어젠다로서 '부정부패와 전면전' 아이템을 택한 것

▣ 또한 '집권 3년차 기업 수사'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 역대 정권은 집권 3년차에 지지율 하락을 막고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대형 기업 수사를 벌여왔음

☑ 역대 정권의 '집권 3년차 국면 전환용 대형 기업 수사' 사례

- ▶ 참여정부 ⇨ 론스타 주가조작 수사[2005. 10.]
- 이후 현대차 비자금 수사[2006년],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2007년]으로 이어짐
- ▶ MB정부 ⇨ 씨엔그룹 수사[2010. 10.]
- 이후 부산저축은행 수사[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수사[2012년]으로 이어짐

- 기업 수사는 정권 입장에서 불리할 것이 없음 ⇨ 부정부패 척결이란 대의 명분이 있을 뿐 아니라 비자금 유입 경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경고 신호를 주기 때문

- '이명재 민정특보-우병우 민정수석' 으로 이어지는 청와대 '민정 라인업' 이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수사를 기획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음 ⇨ 수사를 맡은 조○○ ○○○○지검 특수○부장은 직전 대검 ○○○○ 수사지휘과장으로서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장' 으로 불리기도 함



다. 타겟[target]과 지향점

▣ 대국민담화에서 거시한 '고질적 부정부패'의 예 ⇨ 중요한 시사점

☑ 대국민담화 주요 내용

▶ “최근 ①방위 사업과 관련한 불량 장비·무기 납품, 수뢰 등의 비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②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 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③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비리는 경제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개인의 사익을 위한 ④공직 문서 유출은 우리의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 행위입니다.”

▣ ①'방위 사업·해외 자원 개발' 언급 ⇨ 당정청 관계 주도권 탈환 선언

- MB 정권의 失政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이른바 '사자방'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음 ⇨ 일부 언론에서는 MB를 최종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선정적인 분석도 있으나, 그보다는 非朴계에 당권을 내준 데에 대한 반격을 선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적임

- 친이계 인사들에 대한 경고·압박 메시지 전달 목적으로 보임

- 한편, 직전 정권의 실정 사례를 들추어내어 현 정권의 도덕적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강함 ⇨ 다가오는 총선 대비용 포석

▣ ②'대기업' 언급 ⇨ 경제 활성화에 재벌의 적극적 협조·동참 주문

- 재계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 요청을 묵살할 경우 검찰의 칼날이 언제든 재벌 오너에게 향할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

-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OO가 실형을 선고 받음 ⇨ 현재 재계는 司正 국면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임

- 담화 발표 당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경제5단체장을 만나 청년 고용, 임금 인상, 투자 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뜻을 전달하기도 함

▣ ③'공직 문서 유출' 언급 ⇨ 레임덕 최소화를 위한 공직 기강 확립 선언

- 공직 기강 해이는 엄단할 것임을 공직 사회에 경고한 것임



라. 결과 전망

▣ [단기적 전망] 한동안 상당히 가시적인 활동과 이를 통한 일시적 성과를 거둘 것

- 당장 대국민담화 다음날인 3. 13. ⇨ 포스코건설 압수수색
- 비박계, 재계, 공직 사회 등을 압박하는 카드로서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기 위하여 상당한 액션·퍼포먼스를 취하려 할 것임
 - 추가적인 대기업 수사에 나서거나 비리 공직자에 대한 적발·엄단 조치를 취할 가능성 높음

▣ [중·장기적 전망] 하지만 결국 한시적인 정치적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

-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한 사안들은 대부분 이미 결론이 도출된 사안 들임
 - 방산 비리·해외 자원 개발 ⇨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마무리될 가능성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 사실상 이미 종결된 사안
- 대기업의 비자금 문제가 시작·진행될 수 있으나 역시 한계 있음
 - 재계를 압박하여 경제 활성화에 협력시키는 데에도 한계 있음 ⇨ 대기업에 대한 장기간의 무리한 수사는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역효과
-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총선 준비 정국으로 접어들 것이 확실시
 - 총선에 임박한 시점에 각종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현 정권 인사에게 예기치 못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 요소가 큼 ⇨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무리한 수사는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역대 정권의 '집권 3년차 어젠다' 내지 '국면 전환용 대형 기업 수사'의 효과

⇨ 역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음

▶ 참여정부 ⇨ 4·30, 10·26 재보선 여당 참패

▶ MB정부 ⇨ 6·2 지방선거 여당 참패



3. 對사법부 영향 예측

가. 직접적 영향 ⇨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사법부도 공직 사회의 일부임 ⇨ '사정 태풍'의 영향권 내에 들어
선 것임 📌 [착안점①]

● 레임덕 방지를 위한 공직 기강 확립은 전체 공직 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에는 사법부도 예외라고 할 수 없음

▣ 하지만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대상이 된 것일 뿐임 ⇨ 위험성·가능
성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음

● 레임덕 방지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행정부 산하 공무원이 기강
확립의 최우선 대상일 수밖에 없음 ⇨ 아직까지 사법부는 상대적
후순위임

나. 간접적 영향 ⇨ 다양하고 포괄적일 것으로 예상

▣ ① **검찰·법무부의 득세 계속** ⇨ **사법부의 영향력 상대적 약화 우려**

☑ "이완구 담화 하루만에 황교안, 檢에 '부정부패 척결' 지침"

▶ "황 장관은 이날 검찰에 '부정부패 사범 단속 강화 지시'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아울러 "비리 관련자
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국가 혁신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15. 3.
13.자 아시아경제]

● 지난해 세월호 사건 수사의 교훈 ⇨ 초반에는 다소 무리해보였지만
속전속결·총력전式의 수사를 통해 검찰·법무부는 BH의 신임을 확
득하였음

● '부정부패와 전면전' 국면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정권의 신뢰를
확보하려 나설 것임 ⇨ 그리고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
높음



- 물론 그 과정에서는 다소 시행착오를 겪거나 무리수를 둬으로써 일시적으로 비난 자초·이미지 실추를 겪을 수 있음(ex. 유○○ 검거 지연·실패 등 ➡ **[착안점②]**) ⇨ 하지만 ‘구속 내지 기소’ 를 성공의 지표로 삼는 검찰 기획수사의 특성상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과는 확보할 것임

☑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례

- ▶ 다소 무리한 듯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였으나, 보수적인 여론의 압박을 활용하여 헌재로부터 압도적인 차이의 정당해산 결정을 받아냄 ⇨ 결국 법무부와 헌재 모두에 대한 BH의 전폭적 지지·신뢰로 이어졌음

☑ 최근 헌재의 긍정적 이미지 축적·제고 현황

- ▶ [對BH]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 정권으로부터 ‘체제·정권 유지의 협조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긍정적 이미지 획득
- ▶ [對국민] 간통죄 위헌 결정 ⇨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를 통하여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으로 말미암은 수구적·보수적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국민으로부터 ‘기본권 수호자, 개혁적·진보적 판단자’라는 긍정적 이미지 획득

■ ② 무리한 수사·기소로 인한 후폭풍 ⇨ 부담스러운 사건 처리에 대한 법원 부담 발생·가중 ➡ **[착안점③]**

- 성과를 내기 위한 검찰의 수사·기소는 무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여부, 본안에서의 유·무죄 판단 등에서 법원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임

- 특히 민감한 사안의 경우 BH·언론 등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법원의 결정이 그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전 방위적인 비판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 [사실] ‘벤처 여검사’ 무죄 국민 상식과 거리 멀다.

- ▶ “대법원의 벤츠 여검사 무죄 판결은 공교롭게도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용을 선언한 날 나왔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손발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대법원이 판단하는 부정부패의 기준은 국민 일반의 상식, 정서와는 사뭇 동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검찰이 부정부패를 적발해도 법원이 과연 국민이 수긍할 만한 수준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2015. 3. 14.자 서울신문]



4. 대응 방향 검토

가. 소극적 측면

▣ [착안점①☞] 사정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지 않도록 내부 구성원에 대한 자체적 단속 강화

- 강도 높은 사정 국면에서 자칫 사법부 구성원의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 사법 개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위기 점검·관리 태세를 강화하여야 함
- 가까운 과거에도 국가적인 위기 상황 또는 사정 정국에서 내부 구성원에 대한 단속을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이 초래된 사례 있음 ⇨ 미온적인 대처로는 위기를 예방할 수 없다는 교훈

☑ 작년 세월호 사고 직후 공직자의 처신과 관련한 위기 사례 발생

- ▶ 사건 발생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였음 ⇨ 하지만 만일 조기 진화에 실패하였다면 어떠한 결과를 불러왔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음
- ▶ 당시에 사례 발생 이전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아 공직자로서 처신에 주의할 것을 미리 내부 구성원에게 안내·공지한 터였음

- ① 곧 개최될 전국수석부장회의, 전국사무국장회의 등에서 최근 정국과 관련하여 내부 구성원들이 긴장감을 유지하여야 함을 강조·전파할 필요가 있음 ⇨ ② 이후 전체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에 관하여 안내·공지하여야 함
- CJ계서도 각종 말씀을 통하여 이를 강조하실 필요가 있음 ⇨ ‘부정부패와 전면전’에 직접적으로 동조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기존의 철학, 즉 사법 신뢰 회복·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러한 취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녹여 말씀하실 필요가 있음

나. 적극적 측면

▣ [착안점②☞] 상고법원안 입법 등 주요 사법정책 추진 시기를 면밀



하게 조율하여야 함

- ‘부정부패와 전면전’을 통하여 다소나마 **BH와 여권이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은 상고법원안 입법 등 주요 사법정책 추진에 유리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함**
 - 특히 검찰·법무부의 득세로 사법부가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임
- 하지만 이와 같은 **司正 국면은 항상 ‘양날의 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특히 검찰·법무부가 실책을 저지르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므로 타이밍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함
 - 아래에서 언급하는 주요 사건의 처리 시기와도 연관시킬 필요도 있음

▣ [착안점③] 주요 사건 처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검찰권 적절한 견제 vs. 정권과의 적정한 관계 유지’라는 틀 속에서 사법부가 적정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
 - 특히 불필요하게 언론이나 BH의 오해를 살 필요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함 ⇨ 관련 사건 처리 시 진의가 충분히 설명·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야 함
- 관심 사안의 신속 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끝]

1. 법원문화개선위원회(권역, 기수 순서)

순번	성명	소속 권역, 법원		기수 (생년)	직위	대학교	고교	특기사항
1	윤○○	(이하 열 삭제)	(이하 열 삭제)	(이하 열 삭제)	지법부장	(이하 열 삭제)	(이하 열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조실 추천군 포함 -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상징성 보유 ⇨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어필 - 강경한 주장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06'~07' 사법연수원 교수, 11' 사법연수원 교수, 12'~13' 법원행정처 공보관 ▶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사진)							
2	문○○				지법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조실 추천군 포함 - 칼럼 투고, 저서 출판, 강연 등으로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인기 -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도 반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인물 - 위원 위촉 자체로 사법행정위원회 흥행에 도움 - 강경한 주장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 LLM, 08'~0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 국제인권법연구회 ▶ 소통능력이 뛰어나고, 사고가 유연하며 합리적임
	(사진)							
3	류○○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아카데미 해외연수 ▶ 업무수행이 합리적이고 균형감도 있다는 평 ▶ 법원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사법행정에 협조적 ▶ 활발한 성품으로 동료 법관들과 직원들 사이에 인기가 있음
	(사진)							

순번	성명	소속 권역, 법원	기수 (생년)	직위	대학교	고교	특기사항
4	정○○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조실 추천군 포함 - 여성 판사의 대표로서의 상징성 보유 - 유스티티아 시습(여성 판사의 네이버 커뮤니티), 젠더법연구회 前 총무 - 정치적 성향 없음 ☞ 온건하고, 합리적인 주장할 것으로 기대 - 15 법원문화연구반 참여 경력 ▶ 국제인권법연구회 ▶ ○○○ ○○○○대학 해외연수 ▶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법원 내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외부기관과의 인맥도 형성하고 있다는 평 ▶ 가사소년전문법관
	(사진)						
5	권○○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법연구회 ☞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은 것일 뿐 성향이 강한 것은 아님 ▶ 국제거래법연구회 총무 ▶ 해외시찰 5회 ☞ 사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음 ▶ 업무수행이 합리적이고 균형감도 있음. 동료 법관들 및 직원들과 관계가 아주 원만함 ▶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경청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평
	(사진)						
6	류○○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 법관들 및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사법행정에도 비교적 협조적이라는 평 ▶ 신중한 성격이고, 편향적이지 않음 ▶ 여성다운 섬세함과 열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평
	(사진)						

순번	성명	소속 권역, 법원	기수 (생년)	직위	대학교	고교	특기사항
7	류○○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조실 추천군 포함 - 소신 뚜렷하고 재치 있는 스타일로 신세대 법관 정서 대변 ▶ 국제인권법연구회 ▶ 박○○ 대법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박○○ 판사의 글에 대한 지지의 글 게시 ▶ 주관이 뚜렷하고 개성이 강하지만, 자기주장을 완고하게 고집하는 스타일은 아니며, 의견이 다른 경우 숙고하여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합리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성실하고 책임감이 매우 강함. 사건을 철저히 파악하려는 자세가 돋보인다는 평 ▶ 동료에게 친절하고, 부장에게도 친밀하고 온순한 태도를 보임 ▶ ○○○○ 근무 당시 법원 내외부의 소통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사진)						
8	이○○			고법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대학 해외연수, 04'~05'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10'~11' 법원행정처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 국제인권법연구회 ▶ 기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후배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겸비함
	(사진)						
9	문○○			지법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검사(5년간 근무) ▶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활발하게 활동한 것은 아님) ▶ 소탈한 성격으로 동료 및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 유지. 인화력과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 ▶ 사법행정예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편은 아님 ▶ 지역거점법관(○○)
	(사진)						
10	경○○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만한 성격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임 ▶ 법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료법관 및 직원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편임 ▶ 15'06 출산
	(사진)						

순번	성명	소속 권역, 법원	기수 (생년)	직위	대학교	고교	특기사항
11	김○○			지법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조실 추천군 포함 ▶ ○○ ○○대학 해외연수, 07' ○○○○ 공보관, 14'~15' 대법원 재판연구원(판사) ▶ 국제인권법연구회(인사모), 민사판례연구회 ▶ 서○○ 판사 연임 탈락에 반발하는 글 코트넷 게시 ▶ 선후배 법관들 사이에서 친화력이 있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여 신망이 두터움 ▶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고, 독선적이거나 가치관이 편향되어 있지는 아니함
	(사진)						
12	하○○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을 배려하는 부드러운 성격으로 소유자로, 동호회 활동이나 법원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 사법행정에 협조적임 ▶ 술은 원래 잘 하였으나, 임관 후 금주
	(사진)						
13	김○○			지법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대학 해외연수 ▶ 주관이 뚜렷하고 솔직한 성품. 다소 까다로운 성격이나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 ▶ 14' 지역법관 제도 개선방안 관련 수석부장 설명회 당시 공격적 언동 ▶ 13'~14' 부산가정 근무 당시 여성편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 있었음 ▶ 채식주의자로 체력이 약하고, 여성다운 부드럽고 섬세한 성격이나, 활발하고 적극적임 ▶ ○○○ 부장(22기, ○○○○지원장)이 남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우리법연구회 ▶ 지역거점법관의 인사패턴이나 젠더법 관점에서 목소리 낼 가능성 ▶ 지역거점법관(○○)
	(사진)						

순번	성명	소속 권역, 법원	기수 (생년)	직위	대학교	고교	특기사항
14	이○○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해외연수 ▶재판업무에 열성적이나, 기본 성품은 조용하고 내성적임
	(사진)						
15	김○○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수행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음 ▶밝은 성격. 늘 웃는 얼굴로 예의가 바름. 심성이 고움 ▶동호회와 법원 행사에 적극 참여 ▶○○대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헌법 전공
	(사진)						
16	최○○			지법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前 검사(10년간 근무) ▶국제인권법연구회(운영위원) ▶인사에 대한 요구 내지 불만이 많음 ▶자기주장이 강함 ⇨ 재야임용 법관의 인사패턴 등의 부분에서 목소리 낼 가능성
	(사진)						

순번	성명	소속 권역, 법원		기수 (생년)	직위	대학교	고교	특기사항
17	김○○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법커뮤니티 ▶ 대인관계 원만하고 성실하다는 평 ▶ 남편은 ○○○ 판사(36기, ○○고등 ○○부 배석). 부부 모두 차분하고 합리적인 성품 ▶ 15'01 출산
	(사진)							

2. 재판제도발전위원회(권역, 기수 순서)

순번	성명	소속 권역, 법원		기수 (생년)	직위	대학교	고교	특기사항
1	김○○	(이하 열 삭제)	(이하 열 삭제)	(이하 열 삭제)	고법부장	(이하 열 삭제)	(이하 열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조실 추천군 포함 -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한 '상징성' ⇨ '진보' 성향 법관에게 어필 - 송○○ 판사가 믿고 따르는 선배 - 04'~06'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지도 교수 - 35~38기까지 진보 성향 법관에게 영향력(예: 홍○○ 판사) -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 ⇨ 강경한 주장 정리하여 합리적 결론 도출할 것으로 기대 ▶ 04'~06' 사법연수원 교수(부장), 10' ○○지원장, 15' ○○ 수석부장 ▶ 노동법커뮤니티 회장, 우리법연구회 ▶ 노동법 분야 전문성
	(사진)							
2	이○○	(이하 열 삭제)	(이하 열 삭제)	(이하 열 삭제)	고법판사	(이하 열 삭제)	(이하 열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조실 추천군 포함 -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 국제인권법연구회(인사모), 우리법연구회 ▶ ○○ ○○대학 해외연수, 09'~10'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 합의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강직하고 단호한 면이 있다는 평 ▶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여 대인관계가 넓고 원만함 ▶ 형사법 분야 전문성
	(사진)							
3	조○○	(이하 열 삭제)	(이하 열 삭제)	(이하 열 삭제)	지법부장	(이하 열 삭제)	(이하 열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연수 경력 없고, 주요 선발성 보직 거친 바 없음 ▶ 대법원 증거채부연구반 활동, 전국민사법관포럼 발표, 15' ○○지법 근무 당시 대 언론기관 협력업무 담당 ⇨ 사법행정에 협조적인 것으로 보임 ▶ 대인관계 원만하여 교제범위가 넓고, 소탈한 성격으로 동료 및 후배 판사들로부터 호평
	(사진)							

순번	성명	소속 권역, 법원	기수 (생년)	직위	대학교	고교	특기사항
4	신○○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前 변리사 ▶06' ○○○ 부장 배석 ☞ 상당 기간 병가 사용 ▶업무에 대한 열의가 높고, 사건장악이 뛰어나다는 평 ▶쾌활한 성품이고 주변 사람들과 잘 융화함 ▶지재법 전문성
	(사진)						
5	박○○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前 공인회계사 ▶06' 대법원 조○○ 재판연구원(예비판사) ▶15' 법원문화연구원 ▶친화력이 좋고 적극적임. 법원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식 등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등 조직적합성이 뛰어남 ▶조세법 전문성
	(사진)						
6	홍○○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인권법연구회(인사모), 우리법연구회(强性) ▶비밀카페 '이판사판' 운영자 ▶남편 ○○○ 판사(재판연구원) ▶업무수행에 대한 열의가 높음. 두뇌가 명석하고 창의성이 뛰어남 ▶동료 법관들 및 직원들과 유대관계가 깊고, 15' ○○지법 근무 당시 시민과의 소통행사에 상당한 기여
	(사진)						
7	송○○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LM(전액 장학금) ▶영어실력 우수하여 국제재판소, 국제기구에 관심 많음 ▶당돌하고 예절감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도 있음 ▶08' ○○○ 부장 배석 당시 과도한 스트레스로 업무지장 호소
	(사진)						

순번	성명	소속 권역, 법원	기수 (생년)	직위	대학교	고교	특기사항
8	류○○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성격, 성품 등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
	(사진)						
9	구○○			지법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변호사(8년간 활동) ▶ 업무수행에 대한 열의와 창의성이 돋보임 ▶ 형사판결서 작성 관련, 주요 증거들을 캡처하여 판결서에 첨부하는 등 본인만의 개성 ▶ 외향적이고 활달하며 주관과 개성이 강한 편임. 다만, 문제를 일으킬 만큼 고집이 강한 스타일은 아님 ▶ 언행이 다소 가볍고, 간혹 지엽적인 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평도 있음 ▶ 컴퓨터와 IT 분야에 관한 지식이 풍부함 ▶ 지역거점법관(○○)
	(사진)						
10	이○○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활달한 성격으로 겸손하고 예의바른 성품 ▶ 15년 ○○○○ 근무 당시 배석판사회의 간사 역할 잘 수행(송년회 사회) ▶ ○○대 상법 석사과정으로 회사법 분야에 관심이 많음
	(사진)						
11	유○○			지법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조실 추천군 포함 ▶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 ○○ ○○○○대학 VS ▶ 신○○ 대법관 사태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 선거법위반 판결 관련, 박○○ 후보자 사퇴에 관한 박○○ 판사의 게시물 관련 의견 표명 ▶ 서○○ 판사 연임 탈락과 관련하여, 법관평정제도 및 연임제도 개선을 논의한 단독판사회의 주도 ⇨ 12년 근평연임연구반 참여 ▶ 긍정적이고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정의감이 강한 편이고,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 유지
	(사진)						

순번	성명	소속 권역, 법원	기수 (생년)	직위	대학교	고교	특기사항
12	윤○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 수석부 좌배석 ▶ 직무수행이 충실한 법관으로, 재판업무뿐 아니라 사법행정 보조업무도 책임감 있게 처리 ▶ 밝고 명량한 성격으로, 주도적이진 않으나 동료법관 및 직원들과 비교적 잘 소통함 ▶ 행정법 분야 전문성
	(사진)						
13	이○			고법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대학 VS, 10'~11' 대법원 재판연구관, 13'~ 고법판사 ▶ 조정, 화해에 능숙함 ▶ 사무관 승진시험 준비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법원 야구부 단장을 맡고 있는 등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음 ▶ 민사법 분야의 법리에 밝다는 평 ▶ 지역거점법관(○○)
	(사진)						
14	박○○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진행에 대한 재야의 평가가 매우 우수함 ▶ 사법행정에 협조적·적극적인 것으로 보임 ▶ 성실하고 밝고 명량한 성품. 늘 웃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판사 ▶ 가사소년전문법관 ▶ 08'02 임용 이래 ○○ 시내에서만 근무
	(사진)						
15	백○○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술을 하지 않음(회식자리에서 잘 어울림) ▶ 부드럽고 원만한 성품 ▶ 별다른 특색이 없는 평범한 판사임
	(사진)						

순번	성명	소속 권역, 법원	기수 (생년)	직위	대학교	고교	특기사항
16	장○○			지법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조실 추천군 포함 - 우리법연구회 그룹의 핵심 ☞ 송○○ 판사 등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 보유 - 前 청와대 행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법 기획법관 - 전략적 사고에 능하나, 주장이 강경한 편은 아님 ▶ 법관 의원면직 후 05'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행정관(사개추위), 06'12 다시 임용 ▶ 08' ○○ 공보관, 12'08~15'02 대법원 재판연구관, 15'~16' ○○지원장 ▶ 11'12 김○○ 부장(22기, 퇴직)의 한미FTA 건의문에 대해 동의 표시 ▶ 리더십과 대인관계 능력이 탁월. 선후배 법관이나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움 ▶ 내면적으로는 강직하면서도 외면적으로는 온화하고 여유로우며 포용력이 큼 ▶ 유머감각이 뛰어나고 소탈한 성품 ▶ 지재법 분야 전문성
	(사진)						
17	장○○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법연구회 ☞ 특별한 활동 없음 ▶ 성격은 다소 소극적이나, 동료 법관들과의 관계는 원만. 오피니언 리더는 아님 ▶ 광주 지역 학술단체인 대한민사법학회 법원 측 이사를 맡는 등 사법행정에 협조적임 ▶ 지역거점법관(○○)
	(사진)						



우리법연구회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 검토

2016. 3. 7.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우리법연구회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 개최 예고

- [일시] 2016. 3. 19. (토) 14:30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층 중회의실
- [발표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 교수
- [주제]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 발표자 '강○○ 교수' 프로필

- ▶ [경력] 現 ○○대 로스쿨 교수 (1965년생)
- ▶ [학력] 서울대 법학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 [관심분야] 비정규직, 임금, 근로시간, 단결권, 노동권
- ▶ [주요 활동]

- ※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입법에 대해 **批判的 입장 견지**하며 활발한 대외 활동 중
- 2015. 10. 14. 국회 환노위 소속 **野黨 의원**들이 "9/15 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주최한 **노동법 3개 학회 공동토론회**(한국노동법학회,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한국비교노동법학회)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로 발표
- 2015. 12. 10. 한국노동법학회 발간 학회지인 노동법학을 통해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근로시간, 해고, 취업규칙의 개정론을 중심으로**" 발표
- 2015. 12. 22. 국회 환노위가 개최한 '노동관계법 공청회'에서 **野黨 추천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노동법 5대 법안의 검토**'에 관한 의견 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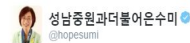
<은수미 의원이 트위터에서 소개한 강○○ 교수의 국회 환노위 공청회 발언 내역>



강성태교수, "정부의 근로시간지침은 황당하다. 이 지침은 주44시간일때 최대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그런데 주40시간이되자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4시간 더 늘려" 지침통치로 장시간 근로1위, 독일보다 4개월 더일하는 나라로 만든 정부 #은수미



강성태교수, "정부여당 비정규직법은 법률이라고 보기 민망할정도로 시행령이 많다"(노동법공청회) 국회를 우회한 시행령과 지침독재조. 국민보기에 민망하지만 재벌보기엔 당연할터이고 경총은 이조차도 부족하다고. 재벌독재를 완성할모양 #은수미



강성태교수, "현행법은 기간제로 2년하고 하루 지나 더일하면 무조건 정규직. 그런데 정부여당법은 4년 하루가될경우 현행법과 달리 무조건 정규직조항없애고 이직수당 주고 해고시키는법, 합리적사유있으면 그조차 안줘. 법적후퇴" #은수미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외협력팀 ⇨ 회원들에게 위 세미나 안내 및 홍보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외협력팀장인 이○○ 판사(○○기)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코트넷 게시판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우리법연구회의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를 **홍보**하면서 참석을 권유
- 2016. 3. 6. 15:00 현재 총 16개의 댓글이 달리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댓글은 주로 대외협력팀의 출범을 축하하고, 활동을 격려하는 내용

☑ 이○○ 판사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코트넷 커뮤니티 게시물

1. 대외협력팀은 종전의 '국제협력팀'과 '기획팀 중 대외협력' 부분을 합하여 새로이 구성된 팀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국내외 인권 관련 단체 및 개인의 관심과 교류 요청이 점차 커짐에 따라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응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주된 활동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 1) 국내외 국제인권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과 상시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유지 및 강화(외부에 연구회를, 외부 단체 및 행사를 연구회에, 쌍방향으로 소개함)
- 2) 연구회 국제화연수 주관 및 지원
- 3) 연구회 주최 국제행사 지원

현재 팀원은 저 포함 5명으로, 새로 생긴 팀인 만큼 젊고 활기차게 활동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팀 활동에 관심 있으신 회원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2. 오늘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지침' 세미나를 안내 드립니다.

(중략) 현안에 관한 시의적절하고 흥미진진한 내용의 주제 발표가 예상됩니다. 관심 있는 회원 분들의 참석인원도 파악이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니, 참석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2016. 3. 4. (금)까지 댓글, 메일,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2. 예상되는 문제점들

가. 정부, 여당 및 보수 성향 언론의 공격

▣ 노동개혁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 與野간 첨예한 대립

- 여야간 첨예한 입장 차이 ⇨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법안들은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

- 정부, 여당은 2월 임시회 종료일(3. 10.)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는 4월 총선 전 처리는 힘든 상태 ⇨ 주요 정치 쟁점으로 지속

▣ 첨예한 정치 쟁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 ⇨ 외부에 알려질 경우 정부, 여당 및 보수 언론의 공격이 우려됨

- 우리법연구회의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이 공개세미나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 비공개세미나일 것으로 추정됨

- 비공개세미나이더라도 세미나의 주제, 발표 및 토론 내용 등이 외부에 알려질 危險性은 상존

-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성향 언론의 기자들이 알게 될 경우 정부, 여당 및 보수 성향 언론사의 사법부 및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될 것임

- 특히, ① 우리법연구회가 법원 청사 내 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세미나를 개최한 사실, ② 법원 내 공식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위 세미나를 소개, 홍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의 정치적 활동을 묵인하였다거나, ▲그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할 우려가 존재함

☑ [예상 가능한 보수 언론의 비판]

- ① 정치 단체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고, 소속 판사들을 징계하라.
- ② 왜 대법원은 우리법연구회의 정치적 활동을 묵인하고 있는가?

▣ [참고] 우리법연구회의 공개세미나가 언론에 보도된 사례 존재

- 우리법연구회는 2009. 10. 10. 공개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음
 - 발표: 최○○ 부장판사 (현 변호사)
 - 주제: 노동사건 심리상 몇 가지 문제점
 - 지정토론: 김○○ 부장판사(○○기), 이○○ 판사(○○기)
 - 장소: 서울고등법원 회의실
- 당시에는 공개세미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하였음 ⇨ 세미나 내용이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되었고,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에서는 발표 내용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음

☑ 파업 (김○○ 논설위원, 동아일보 2009. 10. 13.자 칼럼)

- ▶ **“파업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법원 내 이른바 ‘진보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10일 마련한 공개세미나에서 인천지법 최○○ 부장판사가 한 말이다.** 그는 ‘노동사건 심리(審理)상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우리나라의 법해석은 1800년대 야만적인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사회인식과 역사의식의 퇴영적인 발로”라고 주장**했다. (중략) 토론자로 나선 이○○ ○○지법 판사는 “발표자의 견해에 따를 경우 파업이 전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해도 노조가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반론을 폈다.
- ▶ 강성노조의 과격한 투쟁으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외국계 기업에서 작년과 올해 일어난 34건의 분규 중 33건이 강성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일어났다. **폭력까지 동원한 불법 행위를 방치하면 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판이다. 법관은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노사관계를 바라봐야 한다.**



나.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

■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사안에서 야당 측 입장을 대변하는 발표자만 초빙한 세미나 개최**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문제됨

- 세미나 발표자인 강○○ 교수는 야당 측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15. 12. 22. ‘노동관계법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여당, 야당 추천 진술인을 골고루 초청한 것과 비교됨
 - [여당 추천 진술인] ① 이○○ 경영자총협회 상무, ② 권○○ ○○대 교수, ③ 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④ 윤○○ KDI 연구부장
 - [야당 추천 진술인] ① 강○○ ○○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② 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③ 정○○ 한국노총 본부장, ④ 이○○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 **정치적으로 편향된 세미나라는 주장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음**

- **逆으로, 與黨 측 입장을 대변하는 관계자(이○○ 경영자총협회 상무, 권○○ ○○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만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경우 한겨레, 경향 등 진보 성향 언론에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지적하면서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임**

☑ 법관윤리강령

제3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법관의 직무외 활동)

① 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 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정치적 중립)

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 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 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 실제로 경향신문은 2016. 2. 15.자 기사로 사법연수원이 지난 2010년 법관연수에 청와대 행정관을 강사로 초청하여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와 소통’이란 주제로 강의를 맡기려 한 것을 비판한 바 있음

☑ “법관연수에 청와대 인사 부르려 한 판사 대법의 입으로”(경향신문 2016. 2. 15.)

▶ 법관연수에 청와대 인사를 동원하려다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판사가 대법원을 대표해 발언하는 공보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오는 22일자로 조○○ 재판연구관을 대법원 공보관에 임명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조 판사는 법관연수 기획교수이던 2010년 6월, 제3차 경력 단독판사 연수에 청와대 행정관 ㄱ씨를 ‘국가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와 소통’이란 주제로 강의토록 했다. 당시 연수 대상 법관들은 공식적으로 항의를 전달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그리고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와대 강의를 있는 날의 연수를 모두 거부하겠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알려져 취재가 시작되자 사법연수원 측은 “언론사에 이 문제를 제보한 판사를 색출했으며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언론이 법원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으며, “법관들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를 홍보할 셈이나”는 질타에 박○○ 법원행정처장이 별달리 해명하지 못했다.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5호 위반 가능성 높음**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0. 3. 15. 권고의견 제5호로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 발표
 -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 쟁점 사항에 관하여 야당 측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만을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행위 ⇨ “법관이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외관이나 상황을 만드는 것” 또는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중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권고의견 제5호 위반 가능성 높음
 -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의 위와 같은 행위는 “향후 해당 법관이 맡게 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 (2010. 3. 15. 권고의견 제5호)

▶ 법관은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또는 청렴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아가 법관은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외관이나 상황을 만들어서도 아니 됩니다(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3조, 제7조).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중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 또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법관은 직무상 활동과 마찬가지로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위와 외관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사법의 신뢰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3. 대응 방안

가. 가능한 견해들

■ [1안] 서울법원종합청사 회의실 사용 不許

- [장점①] 서울고등법원 청사관리내규 등 관련 규정 및 원칙에 충실
 - (내규) 서울고등법원 청사관리내규 상 우리법연구회는 비록 법관들로만 구성된 연구모임이더라도 법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법원 외부 연구모임이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세미나실, 회의실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
 -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민사판례연구회 등과 같은 법원 외부 학술단체도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회의실, 세미나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우리법연구회의 서울법원청사 내 세미나실, 회의실 사용 가부 ⇨ 不可

▶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세미나실,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

- 서울고등법원 청사관리내규(이하 '내규')
- ▶ 내규에 의하면,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관리권은 서울고등법원이 보유하나, 일부 시설(예를 들어, 동관 4층 중회의실) 관리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임되어 있음
- ▶ 내규 제5조(허가기준)에 따르면, 연구 모임의 회의실 사용은 ① 연구모임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법원직원이어야 하고, ② 법원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정적 지원하는 연구모임이어야 함 ⇨ ①, ②는 "AND" 조건임
- ▶ 우리법연구회는 ① 법관들로만 구성된 학술모임(2005년경 변호사들은 모두 탈회)이지만, ② 법원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법원 외부의 연구모임임 ⇨ 내규상으로는 회의실, 세미나실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

- [장점②] 보수 언론 등의 비판에 대한 사법부의 부담 감소
 - 우리법연구회의 세미나 개최 사실이 보수 언론 등에 알려지더라도, 법원청



사 외부의 공간에서 독자적으로 개최한 행사이므로, 최소한 대법원 또는 서울고등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묵인, 방관하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있음

● [장점③]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에 대한 시그널

-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법연구회의 前, 現 회원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상황

☑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의 관계

- ▶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전, 현 회원들이 대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경향 존재
- ▶ 노동법연구회의 경우 그 주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젊은 법관들의 가입이 저조함
- ▶ 반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① 주제의 보편성('국제', '인권'), ② 연구회 내부 조직 문화의 참신성(법관 사회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편안한 조직 문화라고 함)으로 인하여 젊은 법관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아무런 제지 없이 법원 청사 내 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사실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활동 허용 범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우려 존재
- 법원 청사 내 회의실 사용 不許 ⇨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간담회 개최 등의 모임을 할 경우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음

● [단점] 법관 사회의 여론이 매우 악화될 우려 존재

- 우리법연구회는 오랜 기간 동안 서울법원종합청사의 회의실 및 세미나실을 아무런 제지 없이 계속 사용해 왔음
 - ▣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① 20층 세미나실, ② 동관 14층 소회의실, ③ 동관 4층 중회의실 등을 사용
- 회의실 사용 불허의 이유로 내규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더라도 우리법연구회는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간섭 내지는 탄압으로 받아들일 소지 다분



☞ 우리법연구회가 회의실 사용 불허 처분을 공론화시킬 우려 존재

- 다수의 일반 판사들의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계속 사용해 오던 회의실을 갑자기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될 우려가 큼 ☞ 내규를 엄밀하게 따지기 보다는 ‘판사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이 법원 내 회의실도 이용하지 못하는가’라는 감정적인 호소가 다수의 일반 판사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임
- 만일 세미나 내용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회의실 사용을 불허했다고 알려질 경우에는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정당한 학문 연구 활동’ 내지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발할 가능성도 큼

■ [2안] 무대응 ⇨ 서울법원종합청사 회의실 사용 허가 및 방관

- [장점] 법관사회의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논거는 [1안]의 단점 부분과 동일
- [단점] 세미나 개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보수 언론 등의 비판에 대한 사법부의 부담이 커짐

■ [3안] 법원 내 회의실 사용 등에 대한 의견 간접 전달

- [장점] 우리법연구회와 의사소통이 잘 되는 법관(예: 윤○○ 부장판사, 최○○ 심의관)을 통해 우리법연구회 임원진(회장: ○○기 문○○ 부장판사, 간사: ○○기 박○○ 판사)에게 이번 세미나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보수 언론 등의 逆風을 맞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세미나는 법원 외의 장소에서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
☞ 우리법연구회의 심리적 저항감 감소
- [단점①] 우리법연구회 임원진이 위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회의실 사용 불허처분을 하는 것 이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음 ☞ 우리법연구회 임원진은 법원행정처가 우리법연구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위와 같은 간접적 의견 전달을 통하여 법원행정처가 우리법

연구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평소의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결과가 됨

- 실제로도,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문○○ 부장판사가 위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 **[단점②]** 비록 간접적인 의견 전달 방식을 취하더라도, 그동안의 오랜 관행과 달리 법원 외의 장소에서 세미나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자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운영진이 심리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법원 행정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조직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됨

나. 검토의견 ⇨ **[2안]과 [3안]의 절충안 “회의실 사용 허가 + 우려 전달”**

▣ **회의실 사용 불허가는 시기적으로 부적절**

- 회의실 사용 불허가 사실이 알려질 경우 다수의 일반 법관들의 여론이 악화될 우려 존재 ⇨ 3월에 집중되어 있는 **판사회의**, 상반기에 출범할 **사법행정위원회**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그룹이 **판사회의** 개최 및 **사법행정위원회** 출범과 관련하여 **조직적인 반발**을 할 가능성 존재
- 회의실 사용 불허가 여부는 **판사회의** 구성 및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이 완료된 뒤인 **2016년 하반기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

▣ **신임 법원행정처장님께 부담이 될 우려 존재**

- 처장님 취임 초기에 우리법연구회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그룹은 이번 조치를 신임 처장님 취임에 따른 정책 기조 변경(예: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인식할 가능성 존재

▣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 크지 않고, 외부에 알려질 경우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신속한 대응 가능**

- 우리법연구회가 세미나 개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



는 한 세미나 발표 내용 및 토론 결과가 보수 언론에 알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외부에 알려질 경우 아래와 같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신속 대응 가능
- ① 법관 윤리와 법관의 학문 연구 활동의 한계에 대한 입장 발표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 구체화
- ② 법원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연구모임의 법원 청사 내 회의실, 세미나실 사용 금지

■ [2안]에 대한 보완 조치

⇒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가 진심 어린 우려 전달

- [필요성] 회의실 사용을 허가하더라도, 우리법연구회의 이번 세미나가 갖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할 필요는 있음 ☞ 법관윤리에 관한 대법원 등의 감독 조치의 일환
- [구체적인 방법]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간사인 박○○ 판사(○○기)를 불러서, 아래와 같은 진심 어린 우려를 전달

☑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가 전달할 사항

▶ [공감, 격려]

- 원래 내규상으로는 회의실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법관들로 구성된 학술단체의 세미나인 점을 고려하여 회의실 사용을 허가하였음

▶ [진심 어린 우려]

- 잘 알고 있겠지만, 이번 세미나 주제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관한 것임
- 해당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작년 12월에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여당, 야당 추천 진술인을 끌고루 초청하였음
- 이번 세미나의 발표자인 강○○ 교수는 국회 공청회에서 야당 추천 진술인으로 의견을 밝힌 분으로서 야당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관들로 구성된 학술단체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사안에서 야당 측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만을 불러서 세미나를 할 경우 언론에서는 우리법연



구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법연구회와 사법부를 공격할 가능성이 큼

-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경향신문에서는 최근 2. 15.자 기사에서, 사법연수원이 지난 2010년 법관연수에 청와대 행정관을 강사로 초청하여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와 소통'이란 주제로 강의를 맡기려 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음
-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법연구회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5호인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 따라서 우리법연구회가 세미나를 개최할 때,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들을 골고루 초청하여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외관을 갖추 필요가 있음

<끝>



미디어 분야 연구회 신설 추진 전략

2018. 6. 5.

기획조정실

1.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 연구회 신설 필요

■ 신설 필요성

- 현행 전문분야연구회 주제 중 상당수는 법관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에 미흡 ⇨ 변화하는 시대 환경 및 젊은 법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분야를 담당할 연구회 신설 필요
-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에서 법원, 재판 및 법관이 왜곡되어 묘사되는 경우 많음 ⇨ 사법불신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므로, 바람직한 법원의 모습을 미디어에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집단적 노력 필요

☑ 안정기 단계에 있는 선진국들은 사법질서 및 법관에 대한 고도의 신뢰 또는 사법정의의 승리를 주제로 하는 명작, 대작 수준의 드라마 및 영화가 꾸준히 생산되고 있음

- ▶ ① 미국 영화 <일급살인(Murder in the first)> 1995년작, 교도소에서의 간접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실화를 바탕으로 함)을 통해 미국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드라마틱하고 통쾌하게 보여주는 대작, 큰 흥행 및 평단의 극찬
- ▶ ② 미국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12 angry men)> 1957년작, 명백한 유죄처럼 보이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통해 사법절차 및 판단결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를 드러냄, 고전 명작의 반열
- ▶ ③ 일본 드라마 <저지 2~섬의 재판관 분투기> 2007년작, 대도시 오사카에서 근무하다가 섬으로 발령난 후 다양한 재판활동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통해 법관으로서 보람을 찾는 내용의 NHK 드라마, 흥행 성공
- ▶ ④ 일본 드라마 <리걸 하이> 2012년작, 변호사가 주인공이지만 변호사의 입 및 재판과정을 통해 사법의 본질, 사법정의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설득력있는 정보 및 감동 전달, 흥행 대성공, 시즌 2 제작
- ▶ 특히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 정의를 강조하는 미국의 경우 단순히 “친근하고 믿을 수 있는 법원”의 수준을 넘어 가장 고귀한 가치인 정의를 정면으로 선언하는 내용의 영화 및 드라마가 다수이고, 대중의 지지도 얻고 있음 ⇨ 사법신뢰의 주요 원천



- 특정 분야 연구회가 인권의 보편성을 비롯한 광범위한 활동범위 및 인적 네트워크를 내세워 법관 사회 이슈를 독점하는 현상 방지할 필요 ⇨ **대안으로서 법관 사회 이슈화될 수 있는 주제**의 연구회 필요

■ 최근의 법원행정처 주요 추진 경과

- 사법정책실, 2013년경 법원 소재 드라마 집중 추진
 - 유명 제작사인 <김○○ 프로덕션>과 매우 구체적인 제작계획 및 시나리오가 확정되는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법원이 거액의 금원을 교부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호지부지됨
- 사법정책실, 2016년 드라마 관련 조언
 - tvN 드라마 ‘기억’ ⇨ 현직 법관의 배우자인 배우 박○○가 드라마 주인공으로서 판사 역할 담당

2. 설립 관련 기본 착안사항

■ 연구분야의 특성상 설립 초반에 자리잡지 못할 경우 존재감이 희박한 연구회가 될 위험성 있음

- 법관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
 - 미디어에 비취진 법원 및 법관의 모습에 관하여는 법관들의 관심 매우 큼
 - 엔터테인먼트법 분야는 젊은 법관들이 관심을 갖는 전문분야 중 연구회 미개설된 몇 안 되는 분야임
 - 적절한 예산 및 인적 네트워크가 지원될 경우 문화행사 관람 및 참여, 예술인 또는 대중적 스타와의 간담회 등으로 높은 호응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를 어렵지 않게 개최할 수 있음
- (흥미 위주 요소 외에) **명분 공유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필요함
 - 미디어 속 왜곡된 법관과 사법의 모습을 바로잡는다는 필요성과 명분은 법관사회는 물론 법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음
 - 대본 집필 관여 작업 등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자가 필수적임



- 이상의 관심과 명분,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단기 성과 이벤트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영화사·방송사·연예기획사 방문 등을 통해 법관 사회 화제의 중심에 서는 등으로 단기간에 현행 연구회 판도에 가시적 변화를 유도하고 조기에 안착시킬 필요성 있음

■ 단, '흥미 위주 단기 이벤트성 모임'으로 변질되는 것은 피해야 함

- 비판 우려

- 명분을 세련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풍 81', '3S 정책' 등과 같은 愚民化 정책으로 비판받으면서 설립의 배후 및 배경이 의심받을 위험 있음

- 콘텐츠의 지속적·전문적 창출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흥미 위주의 단기 이벤트로 받아들여질 우려 있음

■ 전문분야 연구회로서의 본질 이탈 방지

- 미디어 속 사법부의 모습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및 파생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기초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엔터테인먼트법' 관련하여서는 이미 다양한 학술 논의가 있고, 외국의 이론 및 실무를 소개할 것도 많으므로, 학술적 콘텐츠를 지속 공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임

■ ⇨ 결국 열의를 갖고 연구회 설립 및 활동을 주도할 인적 구성이 중요함

3. 설립 준비 법관 관련 검토

■ 부장판사급

- 회장(고법부장급)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지법부장급이 중요함
- 종전에 검토된 문○○, 전○○, 오○○ 부장판사 등이 여전히 가장 유효한 후보군
- 성악활동, 대외활동 등을 이유로 추가 추천된 일부 후보군 있으나 인지도 및 추진력 등의 면에서 적절치 아니함



- ⇨ ① 전국적 인지도, ② 젊은 법관 선호도, ③ 미디어 등 주제 관련 열의(2011년 후배 법관들을 데리고 연예기획사 방문경력 등), ④ 업무 추진력, ⑤ 성과도출 가능성(기존 미디어와의 네트워크 포함) 등 모든 면을 고려할 때 문○○ 부장판사 외의 대안을 찾기 어려움

☑ 문○○ 부장 관련 추가 우려사항 검토

- ▶ ① 행정처의 통제를 벗어날 우려 ⇨ 단기적으로 가능성 낮으므로 문제되지 않음
 - 법관 사회 화제성 선점, 법원 관련 우호적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등 행정처가 희망하는 단기적인 연구회 설립 및 활동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문 부장이 위 목적을 벗어난 결과를 추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사법행정권 입장에서 희망하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내지 목적이 한정되어 있는 사안과는 구별됨
 - 문 부장판사가 '행정처가 원하는 정답대로만'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근 문 부장의 성향(자신의 출판, 집필, 익명카페 활동 등에 대한 대법원 및 행정처의 평가에 관심이 상당함)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처와 전면 대립할 가능성도 낮은 편임
- ▶ ② 연구회에 대한 행정처의 '지원 내지 설립 권유'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과시할 우려 ⇨ 가능성은 있으나, 크게 오해되거나 문제될 사항은 아님
 - 미디어 연구회가 특정 연구회에 대한 견제 성격을 띠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움
 - 사법정책실 및 홍보심의관실 등에서 지속 추진해온 아이টে임 ⇨ 문 부장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
 - 특히 최근 정○○ 사태로 국민의 법원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설령 행정처가 법원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문분야연구회 설립을 권하였다가 것이 알려지더라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이해될 뿐 특정 연구회측으로부터 오해를 살 가능성은 희박함
 - 문○○ 부장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행정처에서 예산 및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는 사실은 어차피 비밀로 유지하기 어려운 내용임 ⇨ 앞에서 본 명분 및 법관들의 관심도를 전면내 내세워 정면 돌파하여도 문제될 가능성 높지 않음
- ▶ 종합 검토의견
 - 문○○ 부장 관련 우려되는 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고, 신설 연구회 안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됨

▣ 권유 방안

- 기획조정실이 전면내 나설 경우 政務的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법정책실 및 홍보심의관실에서 우선 권유



- 국민에게 사법부(법관)의 참모습을 알린다는 명분, 본인의 전문성과 명성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본인의 **작가로서의 위상과 연결성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설득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문○○ 부장은 최근에도 유사한 활동을 스스로 한 적이 있음

☑ '미스 함무라비' 연재

- ▶ 열혈 초임 여성 판사를 주인공으로 한 본격 법정 소설
- ▶ 한겨레에 2015. 5.부터 2016. 3.까지 10개월간 18회에 걸쳐 연재
- ▶ 독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법관 사회 내밀한 모습을 다소 과장되게 묘사하였다는 문제점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법관사회의 고민과 재판절차 및 결과의 보편 타당성을 드러내고자 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음

- 그 후 문부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박○○, 조○○ 심의관 등이 추가로 권유 및 응원 의사를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

▣ 평판사급 추진 법관 후보군 관련

- 아래 예시 외에도 재능과 관심, 열의를 가진 법관들 다수임
 - 김○○ 판사(○○기, ○○지원) ⇨ 연극배우 경력, 2006년 제23회 강원연극제 최우수연기상, 언론보도 다수
 - 김○○ 판사(○○기, ○○지법) ⇨ 연극배우 경력, 연수원 입소 미루고 연극무대, 여성잡지 등 보도
 - 윤○○ 판사(○○기, ○○지법) ⇨ 대형 상업영화 제작 감독인 윤○○ 감독의 누나로서 법원 관련 시나리오 작성 등에도 관심
- 단, 추가 구성원 포섭과정은 원칙적으로 문○○ 부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문부장의 책임감, 몰입도 강화로 긍정적 효과 예상
 - 문○○ 부장이 위와 같은 젊은 법관 후보군들과 어차피 **자체적으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 설립 추진 세력의 인적 구성까지 행정처가 관여하려 할 경우 문○○ 부장이 반발하거나 연구회에 흥미를 잃게 될 가능성이 상당함



▣ 법원공무원 참여 방안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회 회장은 법원공무원을 준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음
- 홍보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전문성 및 재능이 있는 공무원도 참여시킬 필요 있음 ⇨ 최근 법관과 법원공무원간 심리적 거리감 확대로 인한 이원화 조직의 문제점 완화 방안으로도 작동할 수 있음
- 문○○ 부장 등의 성향상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4. 기존 설립 경과에 비춰 본 예상 일정

▣ 일정을 제시하거나 적극 권유하지 아니함이 바람직함

- 전문분야 연구회로서의 특징 및 시기적으로 급박한 아이템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필요
- 미디어 연구회 신설 추진 법관들에게도 일정을 제시하거나 강권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행정처가 적절히 조력함이 타당
- 행정처로서는 연구회 설립의 원만하고 신속한 허가, 종전 다른 연구회 설립 지원 경험 등을 설명하여 자연스럽게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기존 설립 관련 일정 등 참고사항

- 2000년 전문분야연구회 최초 도입(당시 11개 연구회 설립) 이후에 추가로 설립된 연구회
 - 2006년 헌법연구회, 2007년 젠더법 연구회, 2010년 형사법연구회

☑ ① 국제인권법 연구회 신설 경과

▶ 2011. 6. 30. 기획1심의관 메일로 설립 허가 요청 제출

- 당시 법관 33명이 가입 희망하는 것으로 자체 조사되었다면서 신청
- 중복가입 인원을 제외하면 설립 요건인 30명에 미달되었으나, 발기인들의 반발로 '설립허가 적정성 先 회신 후 설립 인원 요건 등 구비 여부 정식 검토'하는 방안 채택

▶ 2011. 8. 설립허가 및 개설 공지, 커뮤니티 구축



☑ 2 젠더법 연구회 신설 ⇨ 기존 여성법 커뮤니티의 발전적 해체라는 특징으로 인해 사전 설립 준비 작업이 특별히 필요하지 아니하였음

- ▶ 2007. 12. 31. 행정처장의 설립허가 - 회원 93명
- ▶ 2008. 1. 11. 여성법커뮤니티 임원회의
- ▶ 2008. 1. 15. 코트넷에 설립허가 및 개설 공지, 커뮤니티 구축

- 자체적으로 30명의 가입 동의를 받은 후 신청하면 즉시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이 상당 ⇨ 연구분야 및 추진세력의 흡입력에 비추어 30인 요건 구비에 아무런 어려움 없을 것임
 - 문○○ 부장판사가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위원이나, 이미 1차 회의는 종료되었고, 9월 임시회의까지는 상당한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 그 전에 추진하는 데 무리 없음
- 9월 이전에 설립 완료되도록 행정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 있음

■ 로드맵(예시)

시기	시행 방안	주무 부서
6월 초	사법정책실 등 연구회 연관 부서에서 문○○ 부장판사에 설립 권유 (소극적 반응일 경우 친분 관계 통하여 자연스럽게 설득)	정책실 (기조실 및 공보관실 측면 지원)
6월 중순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 부장 : 30인 요건 구비 위한 구성원 포섭 ◆ 업무지원 부서 : 설립 직후 시행할 아이TEM 사전 검토 및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행사 관람 및 참여, 예술인 또는 대중적 스타와의 간담회, 주요 영화사·방송사·연예기획사 방문 등 다소 자극적이더라도 단기적 임팩트 있는 아이TEM 준비 필요 	
7월 중순경	설립 허가 신청	
7월 하순경	설립허가 및 개설 코트넷 공지	
8월	설립 직후 홍보 및 이목 집중 아이TEM 시행	
9월 이후	드라마 등 중기 과제 관련 활동 착수 엔터테인먼트 분야 학술 활동 착수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

2018. 6. 5.

1. 검토배경

■ 국제인권법연구회 명의 '법관인사제도' 학술대회 개최 의결

- 1. 24.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결과
 - 1. 15.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수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
 - 1. 19.까지 예정되어 있던 인권법연구회 '연내 행사주제 및 일정' 에 관한 의견수렴기간 종료 후 개최함으로써 '의견수렴결과 이의 없다' 는 명분 확보
 - 참석대상자 12명 중 11명 참석 ⇨ 회장의 반대에도 나머지 10명 전원이 개최 의견 固守
- 3. 25.(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와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예정

■ 인사모가 기획 중인 세부 주제

- ① 대법원 구성의 문제점
- ② 법관인사 이원화의 방향
- ③ 법관의 전보 및 사무분담 (+ 김○○ 부장이 사법부 예산 관련 연구 중)

■ 사법부 독립 및 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성 ⇨ 대응 로드맵 마련 필요

- 법관 사회 내부의 건전한 논의가 아니라, 외부 기관과의 공동행사를 고집 ⇨ 결국 일부 언론 및 정치 세력을 활용한 공론화 시도 예상
- 탄핵심판, 조기 대선, 후임 대법원장 청문회 등 격동의 시기를 앞두고 있음 ⇨ 관련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들 필요성이 큼



2. 대응방향 및 착안사항

- ① 인사제도 관련 논의 자체를 억압한다는 비판의 빌미를 주면 안됨
 - ‘전문분야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립 목적 및 범위에 반함에도 연구회 명의로 외부와 연계된 행사를 하는 것’의 부당성 부각 필요
 - 인사제도를 논의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거나 자제하라는 것이 아님,
 - 행정처가 인사제도 관련 논의 자체를 탄압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그와 같이 법관 사회에 알려지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함
 - 인사 이슈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는 경우보다 오히려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과 비판 수위가 더 높아질 위험이 있음
- ② 설득·대응의 주타깃은 인사모 주도 법관이 아닌 인권법 일반 회원
 - 인사모 주도세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반 회원인 법관 간 분리를 1차 공략지점으로 삼아야 함 ⇨ 일반 법관을 설득할 논리 개발 필요
 - 인사모 주도 법관들에 대한 설득은 어차피 불가능에 가까움
 - 사법행정 관련 민감한 주제일수록 연구회 일반 법관들과 인사모 주도 세력간 유대감은 의외로 미약할 가능성 있음 ⇨ 약한 연결고리 해체 가능
 - 사법부 연구회 공식활동이 아닌 일부 세력의 고립된 활동은 파급력이 현저히 감소됨 ⇨ ‘특정 성향 일부 법관의 의견’으로 방어 가능
 - 인사모와 인적구성이 유사한 우리법연구회가 2015. 5. 상고법원 관련 세미나 개최하였으나, 세간의 이목을 끌지 못하였고 행정처의 부담도 거의 없었음
- ③ 인사제도 세미나 관련 대책과 인사모 관련 대책 모두 검토 필요
 - 부적절한 세미나 개최 자체의 방지가 우선적 과제
 - 인사모가 유사한 인적구성과 유사한 방향성으로 계속 활동하는 한 동일한 위협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음
 - 인사모의 구성 및 활동방향 자체에 관한 強·濫 대응방안 마련 필요함



- ▣ 4 어느 정도의 파열음은 불가피함 ⇨ 오히려 내부 파열음을 통해 인사모 주도세력을 고립시킬 수 있도록 파열음을 용인할 필요
 - 행정처가 직접 나서거나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
 - 결국 인권법 소속 일반 법관과 인사모 사이에 심리적 거리감, 경계감을 형성함으로써 인사모 활동을 위축시켜야 함 ⇨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파열음 내지 불편한 분위기 형성 불가피
 - 파열음은 논리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서 각 촉발시켜야 함

3. 구체적 대응방안

가. [단기 방안] 인사제도 관련 외부 공동 세미나 대응 중심

▣ [파열음 1] 논리적 측면의 문제제기

- 설립 허가받은 활동 범위를 전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문제제기 가능

☑ 2011. 6. 제출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허가 요청서>상의 활동계획

- ▶ 북한인권문제의 대두와 탈북자의 증가,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재판증가, 인권문제의 재판쟁점화에 따라 이를 연구하는 전국적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필요함 ⇨ 명칭 그대로 “국제적” “인권” 이슈를 연구대상으로 함

☑ 2011. 8. 설립 및 회원가입 안내 공지문상의 활동계획

-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응답
- ▶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 성과의 정리 및 정보의 공유
-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심포지엄, 외부강연 등 학술모임의 개최

- **법관 상대 설득 논리**
 - 인사제도 세미나라는 특정 이벤트가 아니라 인사모의 활동 전반에 대한 규정 준수 필요성 문제제기 및 설득
 - ①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②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연구회가 해당 전문분야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는 것은 규정에 반함
 - 규정 준수 여부를 중시하는 법관들의 성향상 어느 정도 설득력 있음



- 인사모는 법관 인사제도 논의가 국제인권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
 - 법관 인사제도 → 사법의 독립, 양질의 재판, 법치주의와 연관 → 국민의 인권 보호와 연관된다는 논리

● 대안 제시 필요

- ① 인사제도 관련 연구회를 신설하거나, 적어도 연구회가 아닌 ② **인사모 자체 명의로 개최**할 수 있음 ⇨ 연구회 전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대안 가능
-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인사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다른 여러 방법 있음 ⇨ **굳이 규정에 반하여 국제인권법연구회 명의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의문이고, 규정에 따라 연구회를 운영할 책무가 있는 회장으로서는 문제제기 불가피**

● ※ 문제제기의 주체

- **현 회장이 제기함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임**
- 현 회장 입장에서는 공론화가 부담될 수 있음 ⇨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동조 탈퇴할 선배 법관 등 **지원군의 사전 확보가 필요할 수 있음**
- 현 회장이 문제제기 전면에 나서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일 경우 **대안적 역할을 할 법관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김○○ 법원장 중재 가능성 ⇨ 소극

-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자 인사모 주도 세력에 막강한 영향력 ⇨ 조기 대선으로 정권교체될 경우 6월경 후임 대법관 제청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우 높을 것임
- 이러한 경우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잡음 및 부담 등을 감안하여 민감한 주제 관련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언론의 주목받는 것을 회피하는 입장을 택할 수도 있으나,
- 김○○ 법원장은 오히려 위 세미나를 지지하고 있음 ⇨ 진보 성향 후배 법관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수 있음 + 위 세미나 관련 중재 역할 기대 난망

- **[법관들 반응 예상] 논리적으로 인사모 주장이 박약함을 이해하면서도 심정적으로는 인사제도 세미나 개최 불발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음
 - 특히 인사모측에서 ‘학문, 토론의 자유 억압’,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탄압’ 등과 같은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반격할 수 있음**
 - 문제제기, 공론화 과정에서 **공격적이지 않고, 논리적이면서 조심스러운 방식이 요구됨 + 아래 정서적 파열음 촉발 방안과 병행 시도되어야 함**



● 일반 법관 회원들의 반응에 따른 후속조치

- ① 다수 회원이 인사제도 세미나 개최의 부적절함에 동의할 경우 ⇨ 세미나 개최 백지화 및 인사모 활동 위축
- ② 부적절하지 않다고 연구회 여론이 모아질 경우 ⇨ 회장은 ‘회장 직위 정상수행 불가’ 를 이유로 회장직 사퇴 (이 경우 아래 파열음 ②항에 따른 추가 조치 계속 시행)
- ③ 부적절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갈 분위기인 경우 회장의 대응카드 ⇨ 아래에서 검토하는 ‘전문분야연구회 활동 공식 평가기구에 이 세미나의 적정성 판단을 의뢰하자’ 고 제안하여 국면전환할 여지 있음

☑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 활용 방안 검토 ⇨ 신중

▶ 근거규정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행정예규’ 제 9조

- ① 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를 둔다.
- ④ 평가위원회는 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 위 ② 항의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자료” 작성 권한에 연구회 활동 범위 내지 논의 주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위원회 활용 방식

- 회장이 ‘법관 인사제도 관련 외부공동세미나 개최(나아가 인사모 활동 자체)가 위 예규에 따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립목적 및 연구회 회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유권해석 의뢰하자’고 제안하여 국면 전환
- 공식 규정에 근거한 공식 위원회의 회신 내지 의견 개진이므로, 연구회 회원들 입장에서 행정처가 연구회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음

▶ 활용 여부 검토

- 법리적으로는 목적 범위를 넘어섬이 명백한 유권해석 및 회신으로서 사후적으로 문제될 내용의 회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면돌파 차원에서(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반 법관들에게 인사모 활동의 규정 위반에 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는 측면에서) 위 평가위원회를 활용할 여지도 있으나,
- 법원행정처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인사제도 세미나 저지 시도의 배후에 행정처가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움
- 정책결정의 영역이나,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파열음 2] 정서적 측면의 문제제기 ⇨ 특정 연구회의 후신, 정치적 목적 하에 전문분야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이용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는 안되고, 일반 회원들이 위와 같은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법연구회 등과의 구체적 연관성이 아니라, 무언가 ‘문제 있고, 논란 있는 연구회’ 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법관들의 동요 예상
 - 현재는 사법부 내 ‘주류 중의 주류’ 로 인식될 수 있는 법관들이 다수 회원으로 포진 ⇨ 젊은 법관들이 인권법연구회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
- [PROCESS] ① 규정에 반하는 활동으로 논란 있는 연구회 → ② 주류 성향 선배 법관들의 대거 탈퇴 → ③ 다수의 법관들이 인사모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 내지 경각심 형성
- ① 규정에 반하는 활동으로 인한 논란 촉발
 - 앞서 본 바와 같이 현 회장의 의지 및 설득력이 관건임
- ② 선배 법관들의 대거 탈퇴
 - 현 회장의 사퇴 및 탈퇴가 전제되어야 명분 및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고법부장(성○○, 이○○, 김○○, 유○○, 김○○, 이○○, 이○○ 부장 등 12명), 심의관 출신 지법부장(윤○○, 함○○, 오○○, 김○○, 전○○ 등)이 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한 지지 차원에서 명분을 내세워 탈퇴
 - 일거에 탈퇴할 경우 행정처가 배후에 있다는 공격을 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적절한 명분을 갖추어 분산 탈퇴하되, 다수가 탈퇴할 필요가 있음
- ③ 다수 법관들의 심리적 거리감 및 주저감 형성
 - 종전 우리법연구회 등의 사례에서 보듯 연구회 활동 관련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의 확산만으로도 상당수 법관이 자연스럽게 탈퇴할 가능성 있음
 - 인권법연구회가 그 시스템 및 인적 구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음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부각될 경우 더 큰 동요 예상됨

▶ 이○○ 부장판사(○○기)의 발언 음미

- 사적 대화 내용이므로 중략

▶ 이○○ 부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아니나, 이번 세미나 관련하여 개최 저지 역할을 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충격 완화책 ①] 주제 선별 후 개최

- 인사모가 준비 중인 위 3가지 주제 중 상대적으로 수용가능한 주제로 논의가 한정되도록 하는 방안
 - 인사제도 세미나 개최를 더 이상 막기 어려운 경우의 플랜 B임
- 법관인사 이원화, 법관의 전보 및 사무분담 ⇨ 수용 불가
 - 법관 사회에서 폭발력이 큰 이슈이고, 현 대법원장님 및 차기 대법원장님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이슈임
 - 사법부 내부의 법관 인사제도에 대하여까지 외부 세력의 목소리가 개입하게 되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됨
 - 부득이한 경우 법관인사 이원화 문제를 기존에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고법부장 승진제도 타당성” 주제로 바꿔 논의하는 정도는 수용 여지
- 대법원 구성 다양화 ⇨ 상대적으로 수용 가능
 - 정치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이슈 ⇨ ① 새로운 주제 아니고, ② 법관들 호응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③ 인사모 활동에 특정 성향 정치권의 이미지가 오버랩될 것임
 - 특히 법관 내부에서는 대법원 구성 다양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인사모와 일반 법관 사회와 분리 효과도 있을 수 있음
 - 외부에 ‘법관 사회 내부에서도 다양화 필요성 제기’ 라는 명분을 주는 등 어느 정도의 타격 예상됨 ⇨ 세미나 개최를 막지 못하는 이상 불가피함

■ [충격 완화책 ②] 개최 시기 조율

- 인사모가 추진 중인 3월(3. 25.) 개최가 상대적으로 안전함
 - 현재 3월 탄핵결정 및 5월 조기대선 유력 ⇨ 탄핵결정과 대선정국 이슈가 다른 논의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3월에 개최해야 주목도를 낮출 수 있음



- 3월 개최 시 **준비기간 부족**으로 깊이 있는 논의 및 행사 구성도 어려울 것임
- 인사모 일부가 제안한 **6월 연기방안은 오히려 위험함**
- ① 조기 대선으로 인해 **법원 관련 공약이 대선 직후에 심층검토될 가능성 있음** ⇨ 대통령 취임 직후인 6월에 민감한 주제로 개최할 경우 **신임 대통령의 사법 개혁 드라이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있음**
- ② 특히 야권 후보 대선 승리 시 ‘**법관 사회 내부의 문제제기**’를 명분으로 내세워 **사법부 인사시스템 및 관행에 정권 차원에서 개입 시도할 우려**
- ③ 후임 대법원장 논의가 본격화될 시점 ⇨ 사법부 내외에서 퇴임을 앞둔 대법원장님을 **구시대·수구적 이미지로 규정짓고 차별화 시도할 위험성**
- ※ MB정권 초기 이○○ 대법원장님 관련 굴욕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

■ [충격 완화책 ③] **최후 고려 수단 ⇨ 인사제도 논의 위원회 발족**

- 사법행정위원회 산하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또는 별도의 인사제도 논의 위원회를 통하여 **제도권 내에서 인사제도 논의의 장 제공**
- 2016년 상반기 **사법행정위원회의 선제적 출범**으로 인사모의 비판적 논의가 상당 기간 위축되었던 선례
- 최후의 수단이므로, 인사모의 세미나가 사법부 내외에서 크게 주목 받고 정치권 등의 압박이 가시화되는 경우에 고려함이 상당함
- **급진적인 논의결과**가 도출될 경우 대법원장님의 8월 정기인사 시나 차기 대법원장님 인사권 행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법원문화개선위 발족시 유사한 우려 있었으나, 원만히 마무리한 노하우 있음 ⇨ 위원회의 경우 **의제 설정권이 행정처에 있는 한 극단적 사태를 예방할 여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사제도의 민감성에 비추어 낙관하기 어려움**
- 위원회 발족 시 **합리적인 논의를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 검토 필요**
- ① 각급 법원에서 법원장 등 사법행정라인 주도하에 1차 의견수렴 절차 (여과 기능), ② 전국 위원회도 위원을 다수로 하는 등 **선명성을 앞세운 일부 견해가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정밀한 검토 필요함



나. [중기 방안] 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 방안 중심

- ▣ ① 모든 전문분야연구회(커뮤니티) 상대로 규범 준수 요구 ⇨ ① 중복가입 해소 + ② 연구범위 준수 관행 정착시 인권법연구회가 가장 큰 타격

- 모든 연구회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모든 연구회를 상대로 준수 요구
 -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 특정 단체에 대해서만 시정 요구 또는 규정 준수 요구를 할 경우 강한 반발 예상
 - 특정 법관들에 대한 압박 논란을 피하고 규정 미준수에 본능적 거부감이 있는 법관들의 통상적인 성향을 활용

● ① 중복 가입 해소 요구

근거규정

-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3조(회원)
 - ② 법관은 2개 이상의 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그 예외가 되는 연구회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재판부 소속 법관은 관련 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다.

중복가입 금지의 취지

- ▶ 각 연구회에 예산 지원 시 가입회원수 등이 고려되는 점, 전문자료에 대한 접근 기회 및 전문성 있는 동료 법관들과의 네트워크 기회를 법관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명목상 가입이나 무분별한 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일 것임

법관들 상대 중복가입 해소의 명분 충분함

- ▶ 위와 같은 중복금지 규정의 취지 존중될 필요 있음
- ▶ 현실적으로 중복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법관들의 경우에만 해외방문, 회식 및 연수비 지원 등에서 실제 피해를 보고 있음

- 중복가입자 일제 해소 시 국제인권법커뮤니티 회원 중 50%가 넘는 200명 이상 급감 ⇨ 다른 커뮤니티에 비하여 현저한 타격

● ② 전문분야 연구범위 준수 요구

근거규정

-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2조(연구회의 설립허가)
 - ③ 제2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 ⇨ 반대해석상 설립목적 위배시 설립허가 취소 가능



- ▶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0조(커뮤니티의 폐쇄)
 - ④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당해 커뮤니티 회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경우 연구회의 코트넷 커뮤니티 폐쇄 가능
 - ☑ **법관들 상대 목적 범위 준수 요구 명분 있음**
 - ▶ **예산 및 전산 자원을 지원받고 있고, 설립목적을 고려하여 설립허가된 연구회가 설립목적의 범위를 준수함은 당연** ⇨ **정당한 규범임에도 부당하게 훼손된 규정의 규범력을 회복할 필요성**
 - ▶ **규정을 준수 중인 절대 다수 연구회와의 형평성**

- 인사모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연구회 자체가 국제인권과 무관한 경제 민주화, 증세와 복지 등의 주제를 세미나에서 다루 음
- 위와 같이 규정상 연구회 설립취소, 커뮤니티 폐쇄가 가능하나, 실제 시행하는 것은 부작용(행정처가 논란의 중심 등)이 훨씬 크므로 신중할 필요

● 규정 준수 요구 방안의 장점

- ▶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관들 상대로 규범력 회복 등의 명분 충분함**
 -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법관들의 피해 방지** 등의 명분 충분함 ⇨ 규범 준수 및 편법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을 중시하는 법관들의 성향상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음
 - **법관들의 학술조직인 전문분야연구회의 활동 및 구성에 대하여 행정처가 관여하는 데 대한 일각의 비판 및 논란을 우회할 수 있음**
- ▶ ② **행정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임**
 - 특히 중복가입금지 해소 요구는 다소 기술적인 개선 사항이므로, **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 공지로 충분** ⇨ 그 공지 기회에 목적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 자제 권유도 함께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정책결정 사항이라기 보다는 기존 규정 준수 및 집행 관련 문제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그 시행에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를 표적으로 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다른 방안에 비하여 낮음**
 - 인사모측의 반발 명분도 크지 아니함

- 중복가입 관행 전면 해소로 인하여 일부 법관들이 커뮤니티 **전문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음** ⇨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방안과 함께 시행 가능**

☑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방안 분석



- ▶ 명분 제시 가능
 - ① '법관들이 자신이 가입한 커뮤니티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의 연구성과에도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법관들의 전문성 강화와 자율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② '사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이상 그 **연구성과를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함으로써 사법부 전체의 전문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명분 제시할 수 있음
- ▶ 오해 소지 차단 가능
 -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반드시 지식광장에 게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압박**'이라는 일각의 의심을 희석시키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 지식광장 게재 독려는 각 법원 수석부장 등이 담당 가능
- ▶ 기대효과
 - ① **학술성과 공유**로 사법부 전문역량 강화,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 코트넷 지식공유 활동 활성화
 - ② 다른 커뮤니티에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중복가입 금지 규정의 엄정한 시행에 따른 불만 내지 부작용 완화**
 - ③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인적 유대 강화의 수단으로 커뮤니티가 적극 활용되는 연구회의 경우** 게시글 공개를 통해 '**은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 내지 이너 써클(Inner Circle)에 대한 소속·결속감**'을 약화시킬 수 있음
 - ④ 특히 **인사모의 경우 논의가 사법부 전체에 전면 공개**됨으로써 내부의 논의가 코트넷 자유게시판에서의 논의와 차별화되지 않게 됨 ⇨ '**인사모의 자유게시판화**'를 통해 **과감하고 도발적인 논의는 위축될 가능성**도 있음
 - ⑤ 커뮤니티 내부 논의 내용 공개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용이**해짐 (심의관 등이 의심을 감수하며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할 필요 없음)

■ ② 규정 위반 연구회에 대한 예산 등 지원 삭감 및 해외 출장 제한

- ① 2017년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대폭 증액(7억원 → 14억원)으로 예산 및 전산 편의 지원에 따른 **실질적인 관리·평가 시스템 재정립 예정**
 - 국제인권법연구회 뿐만 아니라, 목적 외 활동 금지를 비롯한 여러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모든 연구회에 대하여 예산 관련 불이익 부과**
 -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경우 상당한 불이익 예상
- ② **전산 지원 제한**



- 연구회 전체 활동에 대하여 제재하기 보다는 인사모 게시물에 대하여만 열람제한 조치 등으로 일반 회원과 분리 제재 가능

● ③ 인사모 활동 지속할 경우 전문분야 국제화연수 혜택도 박탈 가능

- 인사모로 인해 국제인권법 일반 회원 법관들이 가시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어 인사모측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임

● 극단적으로는 규정 위반 활동에 대하여 징계 여부 검토 가능하나, 위험성이 너무 큼

■ ③ 보편적 인권 관련 사법부 내 다른 조직에서 대형 행사 주도

● 인권 이슈의 독점 해소

- 보편적 인권 관련 이슈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회도 얼마든지 학술연구 활동 가능

- 현재 국제인권법 소속 법관들 상당수는 ‘국제인권’ 이 아닌 보편적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으로 가입 ⇨ 보편적 인권 이슈 관련 다른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은 국제인권법연구회로의 독점적 유입을 방지하는 가능

● 인사모 활동에 대한 자성 목소리 유도

-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자신들이 인권 관련 사법부 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임하고 있음

- 사법부 내 다른 기구(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국제인권법의 전형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에 관하여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 사법행정 관련 문제제기에 매몰되어 정작 국제인권 관련 이슈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법 내부 자성 목소리 유도 가능

- ex) 탈북민, 외국인 노동자, 아시아인권재판소 등 관련 대형 행사(특별 예산 지원 가능) 및 언론 보도

4. 로드맵(안)

시기	방안 예시
1월 하순	◆ 인권법 회장 등이 회원 상대 공식 문제제기



	<p>‘인사제도 외부학술행사는 국제인권법의 전문분야 연구범위와 무관함에도 연구회 공식 행사로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으로서 부당하고, 인권법연구회 명의를 아니라 인사모 명의로 행사 개최 가능한데, 이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지지 의사 밝힐 우군 필요함
2월 초순	<p>◆ 회원인 일반 법관들이 인사모 의견에 동조할 경우 ⇨ 연구 주제 한정하는 방안 관련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주제로 심도 깊은 세미나 개최 - 사법부 예산 관련 논의도 상정 가능
2월 중순	<p>◆ (이하 협의 불발시) 회장등 사퇴 및 탈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배 법관들 회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차원에서 동반 탈퇴 - 법관들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의 활동에 심리적 거리감 발생
인사이동 후 3월 초순	<p>◆ 전정국장 명의 전문분야커뮤니티 운영 관련 안내 말씀 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가입 금지 규정 형해화로 선량한 법관들이 피해받고 있으므로, 모든 커뮤니티 및 회원들은 3월 중순까지 자율적으로 해소해주시기 바람 - 커뮤니티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해주시기 바람 - 중복가입 금지로 인한 학술정보 접근 제한 해소 등을 위하여 커뮤니티의 모든 게시글은 커뮤니티 회원이 아닌 법관에게도 공개됨 <p>◆ 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사법정책연구원 등의 인권 관련 대형 행사 검토 및 준비 착수</p>
3월 중순	<p>◆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반 회원들 동요 및 탈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배법관들 대거 탈퇴 및 중복가입 금지 해소 조치 등의 영향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꺼리는 분위기 형성
3월 하순	<p>◆ 법관 인사제도 관련 연세대 법전원과의 공동학술대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모 등 강성 세력 중심 개최, 고립화 분위기 조성
5월	<p>◆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배정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예산 삭감 등 지원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모에 대한 자연스러운 활동 중지 여론 조성 <p>◆ 대안적 인권 대형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관련 법관들의 관심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닌 다른 연구회 등으로 이동

기획조정실 심의관 후보군(남성: 12명)

<p>윤○○ (이하 사진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19○○. ○○. ▪출신고, 출신대학, 초임, 해외연수, 현 소속법원 경력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품, 실력 모두 흠 잡을 데 없음 ▪○○지법 기획법관·공보관(20○○) ▪○○○○지법 ○○공보관(20○○) ▪정무적 감각도 좋다는 평가 (이하 생략)
<p>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19○○. ○○. ▪출신고, 출신대학, 초임, 해외연수, 현 소속법원 경력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화력이 강하고, 네트워킹에 탁월하며, 리더십이 있음 ▪동료 법관 사이에 신망이 매우 두터움 (이하 생략)
<p>이탄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19○○. ○○. ▪출신고, 출신대학, 초임, 해외연수, 현 소속법원 경력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성실하고, 형사법 분야에서 연구능력이 탁월함 ▪사법행정 개선에 관심이 많고, 진지함 (이하 생략)
<p>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19○○. ○○. ▪출신고, 출신대학, 초임, 해외연수, 현 소속법원 경력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법 기획법관·공보관(20○○, 20○○ 상반기) ▪성격이 활달하고 매우 적극적 (이하 생략)
<p>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19○○. ○○. ▪출신고, 출신대학, 초임, 해외연수, 현 소속법원 경력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법 기획법관(20○○) ▪겸손하고, 원만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움 ▪진중한 성격 (이하 생략)
<p>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19○○. ○○. ▪출신고, 출신대학, 초임, 해외연수, 현 소속법원 경력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법 기획법관·공보관 ▪신임법관연수TF 등 각종 TF에 적극 참가 ▪능력과 인품을 겸비했다는 평 (이하 생략)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19○○. ○○. ▪출신고, 출신대학, 초임, 해외연수, 현 소속법원 경력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법 기획법관(20○○) ▪업무처리가 빠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추진력이 강함 (이하 생략)
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19○○. ○○. ▪출신고, 출신대학, 초임, 해외연수, 현 소속법원 경력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및 사법부에 대한 열정 큼 ▪다양한 커뮤니티 및 코트넷 지식광장 등에서 맹활약 중 (이하 생략)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19○○. ○○. ▪출신고, 출신대학, 초임, 해외연수, 현 소속법원 경력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법 기획법관·공보관(20○○) ▪유머와 재치가 있음 (이하 생략)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19○○. ○○. ▪출신고, 출신대학, 초임, 해외연수, 현 소속법원 경력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겸손한 성품 ▪업무 및 사법부에 대한 열정 큼 ▪IP 허브코트 관련 전문성 확실함 (이하 생략)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19○○. ○○. ▪출신고, 출신대학, 초임, 해외연수, 현 소속법원 경력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법 기획법관 ▪인품 훌륭하고, 성실하다는 평가 (이하 생략)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19○○. ○○. ▪출신고, 출신대학, 초임, 해외연수, 현 소속법원 경력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만한 인품과 실력 (이하 생략)

기획조정실 심의관 후보군(여성: 8명)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19○○. ○○. ▪출신고, 출신대학, 초임, 해외연수, 현 소속법원 경력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격 활달, 추진력 뛰어남 ▪○○법원 기획법관(20○○) ▪국제 ○○법원 컨퍼런스 등 굵직한 행사들을 매끄럽게 처리한 여장부 스타일 (이하 생략)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19○○. ○○. ▪출신고, 출신대학, 초임, 해외연수, 현 소속법원 경력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사법연수원 수석 ▪○○지법 수석부 근무, ○○지원 기획업무 ▪적극적이고 강단 있는 성격 ▪각종 TF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이하 생략)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19○○. ○○. ▪출신고, 출신대학, 초임, 해외연수, 현 소속법원 경력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격이 활달하고 적극적이며, 항상 창의적이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음 ▪추진력 있고, 기개와 강단 있는 스타일임 ▪사법행정 개선에 문제의식이 많음 (이하 생략)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19○○. ○○. ▪출신고, 출신대학, 초임, 해외연수, 현 소속법원 경력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격이 활달하고 매우 적극적 ▪각종 행사와 TF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이하 생략)
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19○○. ○○. ▪출신고, 출신대학, 초임, 해외연수, 현 소속법원 경력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달한 면과 진중한 면을 고루 갖추고 있고, 모든 면에서 원만하고 무난한 스타일 ▪아버지가 ○○○ 의원임 (이하 생략)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19○○. ○○. ▪출신고, 출신대학, 초임, 해외연수, 현 소속법원 경력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격이 차분하면서도 부드럽고, 주변 분위기와 잘 조화를 이루는 편 ▪지원실 TF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이하 생략)

<p>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19○○. ○○. ▪출신고, 출신대학, 초임, 해외연수, 현 소속법원 경력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격 활발하고 적극적 ▪각종 TF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이하 생략)
<p>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19○○. ○○. ▪출신고, 출신대학, 초임, 해외연수, 현 소속법원 경력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격이 활발하고 유연성 있음 ▪○○○ 커뮤니티 총무를 맡아 커뮤니티 운영을 매끄럽게 처리 (이하 생략)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경과 (대외비)

2017. 1. 16.

1. 경과

■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 2017. 1. 15. 일요일 20:00
- 장소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실
- 안건 : 연세대 법전원과의 공동세미나 개최 문제
- 참석자(10인)
 - 이○○(18기, 연구회장), 김○○(29기, 연구회 간사)
 - 운영위원 : 김○○(22기),¹⁾ 이○○(26기, 인사모 팀장),²⁾ 정○○(27기)³⁾
 - 팀장 : 이○○(32기, 홍보),⁴⁾ 이○○(34기, 기획), 조○○(35기, 대외협력), 홍○○(35기, 학술), 이○○(27기, 편집위원장)
- 불참자(2인)
 - 운영위원 : 이○○(16기), 김○○(24기)

■ 운영위원회 권한 (연구회칙 제7조)

- 총회 의결사항인 ‘회칙 개정, 회장 및 간사의 선출, 결산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제4조) 이외의 안건을 결정
- 의결 요건 :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1) 신○○ 대법관 사태 때 주동적 입장

2) 강○○ 판결

3) 임관 성적에 비해 좋은 임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현재 파견 1년 만에 복귀 명령 받음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회는 주요 안건의 결정을 위하여 회장, 분과위원장, 편집위원장, 간사, 총무,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의 요구로 소집되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안, 기타 총회의 의결사항 이외의 안건을 결정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주요 발언 내용

■ 이○○

● 커뮤니티 명의를 사용한 외부행사 반대

- 연구회 회칙 제1조, 제8조에서 정한 “국제인권법 분야” 또는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에 포함되지 않음은 명백함

제1조 (목적) 이 연구회는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와 논문발표, 세미나, 국제교류 등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그 연구 성과를 재판실무에 반영하여 국민과 인류에게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활동)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2.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
3.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법률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개최
5.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국제 교류
6.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 공동세미나는 커뮤니티의 공식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추가 논의 위한 운영위원회의 속행

- 인사 문제는 다수의 관심사이므로 커뮤니티 내 다른 회원 의사도 들어야 함
- 소모임에서 모든 내용을 결정한 후 의례적으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가 아님 (이○○, 동조)

● 공동세미나의 연기

- 꼭 개최하겠다면, 여러 가지 시국 상황이 정리된 9월에 가서야 고려해 볼 수 있음

■ 나머지 운영위원들

- 법관인사 문제는 커뮤니티의 정당한 활동
 - 법관인사는 사법권의 독립과 직결되고, 이는 기본권 보장의 필수조건이므로 커뮤니티 활동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세미나 주제에 '인사'라는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함 (조○○)
 - 그동안 소모임 활동에 운영위원회가 제동을 건 적이 없음
-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됨
 - 1. 13. 금요일 운영위원회 개최사실을 공지하고 의견을 물어보았는바(아래 박스 글), 3명의 회원이 법관인사 논의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

늦었지만 새해 인사 올립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된 시간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7. 1. 15. 20:00에 2017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회원 여러분과 이를 공유하기 위하여 이 글을 씁니다.

우리 연구회는 그 동안 개별 소모임이 주관하는 정기세미나를 몇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인사모가 주관하는 정기세미나를 연세대학교와의 공동학술대회 형식하에 '법관인사제도'라는 주제로 3월에 개최하는 문제에 관하여 집행부 내에서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회칙 제7조에 기하여 위 문제를 논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위 행사의 개최 여부, 주제의 적절성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은 서로 지혜를 모아 이 문제에 관하여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위의 문제에 관하여 이 글에 대하여 댓글을 다시거나 기획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의견을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의견은 운영위원회의에 풍요로운 밑거름이자 지렛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 ⇨ *but*, 양쪽 입장의 구체적 내용 및 논거를 밝히지 않은 공지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주장은 부당함

- 3월 혹은 6월에 개최하는 것이 옳음
 - 공동세미나 개최는 인사 직후인 3월에 해야 함 (홍○○)
 -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여 연기하더라도 6월 이후는 不可 (이○○)

■ 기타

- 인사제도 논의가 커뮤니티 활동 범위에 속한다는 데에 이○○ 회장을 제외한 9명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였음
- 가장 강경한 입장 : 이○○ 판사
 - 이○○ 부장판사의 ‘절차 문제, 연기 고려’ 등의 의견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다 정해졌는데 웬 탄소리” 등의 강경 발언을 하였음

3. 회의 결과

▣ 1. 20. 금요일 운영위원회 개최

- 이○○ 기획팀장이 1. 9. ‘연내 행사 주제 및 일정’에 관한 의견 공지를 하였는바, 그 기한이 1. 19.까지이므로 그 다음 날 운영위원회 개최
- 카톡방이나 인터넷으로 개최하여 다수결로 결정할 예정

▣ 주제 공모의 문제

- 위 공지 결과 별다른 의견 제시가 없다면 인사모 제안으로 다음 사항을 주제로 제시, 결정되게 하겠음 (이○○)
 - ① 대법원 구성의 문제점
 - ② 법관인사 이원화의 방향
 - ③ 법관의 전보 및 사무분담 문제

4. 향후 대책 (커뮤니티 명의로의 행사 고수 時)

가. 강경 案

▣ 대응 방안

- ① 커뮤니티 명칭 사용 및 회비 지출 승인 거부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8조(활동)

- ② 연구회 간사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1년 동안의 활동성과, 회원현황, 결산현황,

및 당해 연도의 활동계획, 소요예산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입 회장 학술대회 불참 → 신입 회장 사임
 - 신입 회장 사임하면서 가능하면 고법부장 이상 회원도 함께 탈회
- ③ 예산 지원 감축(최소화) ⇨ 법원행정처의 결산 심사 및 관리 강독 강화

■ 연구회의 설립허가 취소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폐쇄

- 이 방안은 행정처와의 정면 대립을 낳는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2조(연구회의 설립허가)

③ 제2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설립 허가를 할 수 있다. ⇨ 반대해석상 설립허가 취소 가능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0조(커뮤니티의 폐쇄)

④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당해 커뮤니티 회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게시물의 이전 또는 삭제, 커뮤니티의 폐쇄, 커뮤니티 운영자 변경, 코트넷 이용권한 제한을 비롯한 코트넷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이 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관리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커뮤니티 폐쇄, 운영자 변경 또는 커뮤니티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유화 내지 방임 案

■ 「연구회 자체 학술행사」로 개최하는 안

- 커뮤니티 명의의 사용을 許하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전원의 공동 학술행사 개최 대신 3월 「연구회 자체 학술행사」로 개최하는 방안
- 주제도 “각국의 법관인사제도 연구”와 같이 학술적으로 네이밍함
- 교수들은 발표자로만 참여시킴
- 이○○ 회장 제시

■ 논거

- 현재 운영위원회는 인사모 구성원에 의한 과다 대표성을 갖고 있음
 - 운영위원 중 상당수가 인사모 소모임 구성원임
 - 운영위원회 결과가 “9 : 1”이라는 점은 민주토론절차상 있을 수 없는 결과임
 - 이들은 다른 일반 회원들과 달리 일방적, 편향적 사고를 갖고 있음
- 3월에 개최하게 하는 것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의 행사가 된다는 점에서 법원 내·외부의 반향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임
- 실제적으로 공동세미나에 참여할 수는 인사모를 중심으로 한 20~30명에 불과할 것임

5. 검토

■ 강경 안의 문제점

- 대법원과의 대립으로 비춰질 가능성 ⇨ 제2의 ‘우리법연구회’처럼 그 지위가 격상될 가능성
-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면, 각 정당에서 연구회 회칙 내용 및 예산의 공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각 당의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국회에서 문제될 수 있음
- 현재 35기 이하는 법관인사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바, 그 흐름을 막기는 어려워서 자칫 큰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부담이 될 것임

■ 유화 안의 문제점

- 코트넷 자유게시판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법관사회 전반에 공동세미나 개최 사실을 알리려 할 것이고, 이는 곧 법관인사 논의의 주체가 국제인권법연구회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고,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는 셈이 됨

- 향후 커뮤니티 명의로 사법행정의 모든 사항을 논하려 할 것임
- 차기 대법원장의 부담으로 직결됨

6. 결론

▣ 행정처 내에서도 견해가 나뉘고 있음 ⇨ 정책 결정 요

▣ 이○○ 인사모 팀장의 행사 연기 제안

- 1. 16. 이○○은 이○○ 회장에게 “6월 말 내지 7월 초에 개최하게 되면 이미 대법원장과 두 대법관의 후임 윤곽이 드러날 터이므로, 그 때 개최하더라도 이○○ 회장과 現 대법원장의 관계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행사의 연기를 제안
- 이 역시 유화 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는 하나, 상황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만한 방안임 [끝]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2015. 8. 18.

기획조정실

1. 차○○ 판사 프로필

(사진)	차○○ (35기) 1977. 10. 30.	19○○ ○○ ○○고 졸업 20○○ ○○대 법학과 졸업 20○○ ○○○○지법 (정○○ 前 부장판사 우배석) 20○○ ○○○○지법 20○○ ○○지원 20○○. 8. ~ 20○○. 2. ○○ 장기해외연수(1년 6개월)
------	-------------------------------	--

- 장애인 관련 법률에 각별한 관심 ⇨ 다수 논문 집필
 -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와 친분 두터움
- ○○대학교 대학원 사회보장법 전공
- 現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회원
- ○○ 장기해외연수(1년 6개월, ○○○○○연구소) ⇨ 방대한 양의 충실한 해외연수 보고서로 행정처에서 호평을 받았음

2. 사건 경과

■ 8. 11. 코트넷에 글 게시

- 8. 7. Facebook에 상고법원 및 사실심 충실화 문제에 대하여 고민 중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손○○ 교수(성균관대 로스쿨)의 글 링크
 - 손○○,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법률신문 연구논단
- 8. 11.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토론광장, 커뮤니티 등에 “사실심 충실화”



관련 판사 수 대폭 증원과 상고제한 추진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 게시

-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주요안건 게시판 중 토론마당(법관 외 직원들도 열람 가능), 민사재판커뮤니티,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 8. 11. 친분 있는 판사들에게 같은 글을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의견 구함
- 이메일에 대한 전체회신의 방법으로 친분 있는 판사들과 활발한 토론 중

■ 8. 11.자 코트넷 게시글의 주요 내용

- 상고법원 도입의 전제로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고심의 비중이 고착되거나 악화되고, 이는 사실심 판단이 보다 자주 뒤집힐 가능성을 늘려 사실심에 대한 심리를 더욱 약화시킴
- 늦더라도 정공법으로 상고제한 제도를 추진하면서 판사 1인 당 사건부담을 대폭 줄여서 사실심을 충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호○○ 교수, 손○○ 교수의 주장을 논거로 사용
- 현재 우리나라의 판사 1인 당 사건 수는 독일의 3~4배이나, 독일보다 사건 처리 속도는 빠름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비정상적인 판사 1인 당 사건 수를 대폭 감소시키는 것
 - 법원행정처가 사실심 충실화 방안으로 제시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전문심리관제도, 특성화 법원 제도 등은 본질적 수단이 될 수 없고, 극히 일부 사건에 한정된 효과만 있을 뿐임
 - 차○○ 판사 본인의 경우 독일식 집중구술심리모델을 시도하고 있으나, 거의 변론 전날에 날을 새게 되고, 야근과 주말근무가 더 늘어나고 있음
- 판사 수를 최소 1.5배, 최대 3배까지 증원해서 독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사 1인 당 사건 수를 줄이면 사실심 충실화가 가능해짐

■ 판사들의 반응



- 게시글이 높은 조회 수를 보이면서 **판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주요안건 게시판 중 토론마당 ⇨ 8. 13. 기준 조회수 180
 - 민사재판커뮤니티 ⇨ 조회수 662(수정 前 글) 및 525(수정 後 글)
- 댓글을 분석해 보면 **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아래 4가지로 나뉨
 - ① **법관 수 대폭 증원에 찬성**(이○○, 권○○ 부장판사, 박○○, 이○○ 판사)
 - ② 법관 대폭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법관 보조인력 대폭 증원**(사법보좌관, 상근조정위원, 재판연구원 등 비법관인력 대폭 증원, 일반 법관과 처우를 달리하는 특정분야 전담법관 확충)이 현실적인 대안임(문○○ 부장판사)
 - ③ 법관 수 대폭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판사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서 사건 적체를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심리기법을 실험해야 함** ⇨ **지나친 과로와 편법적인 재판 진행을 멈추는 실천**(예: **사건 적체 집단 결의**) 필요(홍○○, 오○○, 김○○ 판사)
 - ④ 조정전치주의 등 **조정활성화를 위한 시도**를 해야 함(정○○ 판사)

■ 현재까지 법원행정처의 대응

- 8. 11. 사법지원실 이○○ 심의관이 사실심 충실화의 내용을 설명
 - 특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으로 2019년까지 판사 정원 370명이 순차 증원될 예정임을 설명
- 이○○ 판사의 설명 글에 대해 정○○ 판사가 댓글로 아래와 같이 질문 하였으나, 아직 답변하지 않은 상태
 - “상고법원 도입으로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되면, 상고법관의 수와 연구관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로 인해 사실심의 결원이 발생하면 앞으로 예정된 법관 증원으로 결원 보충이 가능한지”

3. 차○○ 판사의 상황



▣ 코트넷 글 게시 경위

- 재판 준비에 매우 철저한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
 - 재판 전날은 거의 밤을 새우고, 수시로 야간 및 주말 근무
 - 사건 메모를 하다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함

☑ 8. 11.자 이메일

과로 속에 살아온 지난 날이 슬퍼서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 직전에, 메모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작성하다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달려갔는데, 임종은 못 뵈었는데, 그 때 참 슬펐는데, 다시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1-2일 연속으로 날을 새다시피 하지는 않지요. 재판에 대한 기대기준을 낮추어야겠지요. 과로사 위험을 낮추려면. 한국에 만연한 과로사회에서, 판사만 주 8시간 보장받으면서 판결을 쓰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실험하는 모델에서 평균 근로시간은 일 8시간이 아닌 일 10시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기타 업무에 쓰지 않은 시간을 모두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실근로로 매일 10시간을 일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사실심 충실화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독일 유학에서 복귀한 후, 독일식 집중심리를 민사재판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재의 업무량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코트넷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임

☑ 8. 12.자 이메일

300건대 초반의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주 50-60시간의 근로와 반복적인 날샘근무로 이런 성과를 낸 것은 일반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실험한 모델은, 전국 법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사실 실패입니다. 지금의 사건 배당 수준하에서는. 그런데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서,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과도한 초과근로시간을 적정한 수준의 초과근로로 줄일까. 제가 실험한 모델은 꽃도 못 피어보고, 실험자의 체력과 건강 문제로, 다시 퇴행의 방향으로 내리막을 걷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타협을 한 판사가 저 혼자만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아니 상당히 아쉽다는 것입니다. 사건배당이 1/2로만, 아니 1/1.5 정도만 되면, 계속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까지 보완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성 화해권고라는 묘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독일 판사보다 높은 효율로 열추 비슷한 재판과정의 투명화와 신뢰회복 기능을 가지는 집중 구술변론 모델을 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 다함께 사건적체를 감수하자는 다른 판사의 주장에 대해 “사건적체를 감수할 용기가 없다”고 답변

☑ 8. 13.자 이메일

지금 토론의 과정에서, 판사 수 증원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과로를 줄이고, 비정상적인 사건처리 관행을 버리자. 사건을 빨리 처리하자는 강박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 판사님부터 줄여 보십시오. 그러면 대법원장님을 설득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못하실 것입니다. 저도 고민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판사 한 100명이 같이 한다면 해볼만 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 상고법원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 견지 ⇨ 법관증원 + 상고허가제

- 상고법원이 핵심의제로 설정되면서 하급심 법관 증원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 지적

☑ 8. 11.자 이메일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1심 판사의 대폭 증원이 사실심 충실화의 가장 큰 과제라고, 판사들, 변호사들, 학자들의 상당수가 일치하여 이야기하지만, 상고법원안과 결합된 사실심 충실화 방안 건의문에서 단 한줄이라도 언급이 되었습니까? **부적절한 선을 넘나드는(예를 들어 칼럼의 사실상 대필작성 등) 입법로비의 치열함과 뻔뻔함**을, 1심 판사 대폭 증원에 일부라도 쓸 수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고법원이 가장 우선해서 추진해야 할 지상역점 과제니까요.

- 대법원의 업무부담이 문제라면, 하급심의 업무부담도 문제라고 지적

☑ 8. 11.자 이메일

대법관 1인의 사건부담 수가 너무 많아 상고심 판단이 약화되고, 느려지고,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대법관 1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심의 판사들에게도 공통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뭐, 대법관이 가진 1건의 가치와 의미가 사실심 법관 1인이 가진 1건의 가치와 의미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혹은 없을까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대법관 1인의 사건부담 수를 줄이려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고심 사건 수를 늘리는 상고법원안**은, 주객이 전도된 논의가 아닐까요? 법률심으로서 상고심 비중의 정상성이라는 면에서, 상고법원은 비정상을 더 비정상으로 만드는 안이 아닌가요?

- 현재의 과도한 업무량이 비정상적 재판, 사법불신을 낳는다고 확신

☑ 8. 11.자 이메일



사건이 폭주할 때, 충실화된 심리로, 사건처리를 늦추어야 했던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대응방안이었을 것입니다. 불충분한 심리로(충분과 불충분의 기준은 개인 판사의 의견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 1심 재판의 평균적 수준은 불충분입니다) 통계에 맞추어 사건처리 속도를 빠르게 유지, 혹은 더 빠르게 만드는 방향으로 달려온 것이 지금의 파국(...파국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기는 합니다)에 달한 것입니다.

- 전형적인 이론가 ⇨ 본인 스스로 상고법원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상태이고, 현재 대법원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

☑ 8. 11.자 이메일

사실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만큼, 뛰어나면서,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진 엘리트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집단도 한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고법원에 사로잡힌 이 집단 지성의 확일성과 의사소통의 경직성, 검증되지 않은 주입된 논리의 순응성 내지 자기내면화는 왜일까요? 특히 상고법원 안과 관련하여서도, 충실한 자기생각으로 고유한 사색을 행하여 답을 찾아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논리를 보여주는 판사님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 심리불속행 폐지에 대한 반감이 가장 강함

☑ 8. 11.자 이메일

상고법원 도입과 심리불속행 폐지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고심 비중을 더 올리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이 전 이상합니다. 이런 상고심이 법률심이어야 한다는 명제에서 가장 먼저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 법관 노조와 같은 법관 결사 단체의 결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8. 11.자 이메일

제 글에서 빠진 수많은 문제의식 중 하나는 법관 결사조직, 법관 단체의 역할론입니다. 한국도 한국 법관연합 등의 단체가(독일이나 프랑스는 법관노조도 있지만, 노조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한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겠지요?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요. 상고법원이 불가피한 논리와 비슷해졌네요. 하지만 이 부분은 진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무게를 지고 있는 문제니까요). 한국 사법부의 의사결정 구조는, 행정처로 대표되는 사법행정 관료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법관 결사 단체의 부존재로 인하여 더 왜곡된 측면이 큼니다. 거기에다가, 재판업무로 치이는 일선 판사의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 고민한 여유는 더 없고, 견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 대법원은 판사 수의 대폭 증원을 바라지 않는다고 확신

☑ 8. 13.자 이메일

▶ 대법원은 판사 수의 대폭 증원은 바라지 않고 500명의 증원을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만, 상고법원에 쏟는 에너지를 판사 수 증원에 다 쏟아 부으면 500명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증원이 가능합니다. 상고법원이 태풍의 눈처럼, 다른 중요한 이슈에 들일 노력을 먹어갑니다.

▶ 지금 엄청난 통계압박으로 판사들을 관리하고, 감사 때마다 다양한 통계분석으로, 조금이라도 사건처리율이 내려가면 압박해가는, 이 시스템의 정점에는 대법원장님이 있는데, 신속한 심리를 대법원장님이 내려놓는 결단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대법원장님은 판사 수를 늘리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풍문을 자주 들었고, 어느 한 판사님은 사건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 판사는, 늦게 까지 일하기 싫다는 판사는 법원을 나가라는 이야기를 대법원장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했는데... 제가 들은 풍문들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 아닌 듯 합니다.

■ 대법관 증원론에도 호의적인 입장 유지

- 핵심적인 주장은 ① “법관 대폭 증원을 통한 사실심 충실화”와 ② “상고허가제”이지만, ③ “대법관 대폭 증원”에도 호의적인 입장 유지 ⇨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론”을 동시에 추진하면 대법원 재판이 더욱 충실해 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됨 ⇨ 민변의 입장과 유사(실제로도 차○ ○ 판사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친분이 있음)

☑ 8. 13.자 이메일

▶ 대법관 증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법원만 OK하면 대법관은 금방 증원됩니다. 상고법원 반대론자들이 다 대법관 증원을 원하는데,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만 OK하면 됩니다. 50명, 100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3-4명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3~4명과 50명, 100명 사이에는 무수한 숫자들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무엇을 근거로 하신 것인지 궁금한데, 혹시 전원합의체의 문제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200명(부정확할 수는 있습니다)의 법관이 있는 민, 형사 사건을 다루는 연방일방법원의 예를 부정적 예로 드는데, 과연 기능의 측면에서, 독일 연방일방법원 혹은 5개 연방법원이 만들어내는 상고심 판결들의 질("질"은 뭘로 평가할까요?)은 일부 부간의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국 대법원보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 사실 더 높겠죠. 사회적인 존중과

신뢰도도 높고, 전합문제를 해결하는 나름의 방법론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많은 판사수의 장점을 가릴 정도는 결코 아닙니다. 스페인에 연수 다녀 온 분께, 20-40명의 스페인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방법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 몇 개 안되는 전원합의체를 가지고 전원합의체의 어려움을 대법관 증원의 반대 논거로 드는 것은 표면적이고, 대법원은 대법관 수가 느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법원 외부의 인사들이 다수 들어올 통로가 된다는 위기의식, 그래서 법원의 독립을 해할 수 있다는 논리... 이 부분은 별도의 논쟁적인 이슈이므로 나중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합니다.

▶ 소부간의 판결의 불일치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소부 간의 불일치는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진행하는 사건의 뇌손상으로 인한 편마비에서 파생장해에 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도, 2개의 대법원 판결이 모순됨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이지, 발견되면 그 다음 사건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로 그런 모순의 가능성은 점점 더 줄입니다.

☑ 8. 17.자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토론광장 게시글

▶ 주변의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가들부터 설득하고 토론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전 변호사 단체 고위 임원으로서, 사실심 충실화 논의를 전제로 한 상고법원에 찬성한 분께 전화를 드려 40여분 정도 토론을 해봤고, 사실심 판사 대폭(1.5배~3배) 증원으로 1심에서 모든, 주장, 입증을 다 심리하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증거발굴에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상고허가제 도입이 바른 방향이라는 공감을 얻었습니다. 다만 법원의 정책의지의 진정성을 문제삼으면서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해봐라. 그러면 대법원의 진심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불신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는 점도 사실대로 밝혀봅니다.

4. 대응 방안

가. [총론] 방향 설정

■ 관망 v. 사전예방적 대응 ⇨ 사전예방적 대응 필요

- 차○○ 판사의 주장이 ‘상고허가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므로, 당분간 관망해 보자는 주장도 존재
- 차○○ 판사의 문제의식은 ‘상고허가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핵심은 ‘상고허가제’가 아니라 ‘법관증원’이고 이는 서기호 의원 등이 주장하



는 ‘대법관 증원론에 기초를 둔 상고법원 반대론’과 맥락을 같이 함

☑ 서기호, ‘상고법원의 새로운 시작,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한겨레, 7. 29.)
 필자가 판사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법원이 일선 판사들에게 ‘충실한 재판보다는 신속한 재판’을 은근히 강요한다는 것이다. 판사들의 근무점수를 주는 법원장들은 사건처리 건수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일선 판사들은 사건 처리 속도와 처리 건수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심지어 판사들에게 사건처리 통계표를 회람시키는 법원장도 있었다. 소속 법원의 사건처리 속도를 잘 관리하는 법원장들은 대법관 후보로 낙점받는 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판사들에게 있어 ‘사건’이란 당사자들의 억울함이 절절히 묻어나는 ‘해소되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신속히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한다.

- 차○○ 판사가 제기하는 의문을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면, 오해에서 기인한 다소 과격한 주장을 하는 다른 판사들의 글들이 코트넷 게시판에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생각이 정리되면 글을 하나 올리겠다는 판사들 여럿 있음), 만일 언론보도가 된다면 상고법원 입법 전략에 가해지는 피해가 너무나 클 것임

■ 지원장, 법원장의 개별 면담 v. 논리적 설득 ⇨ 논리적 설득 필요

- 차○○ 판사는 현재 상고법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완료된 상태 ⇨ 자신의 의문을 풀어줄 논리적 답변을 원함
- 논리적 설득 논거 없이 법원장, 지원장 등을 통한 개별 면담은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많음

나. [각론] 구체적 대응방안

① [1단계] 행정처 경험 있는 부장판사를 통한 논리적 설득

- 차○○ 부장판사(○○기, ○○○○지법, 前 사법등기국장) ⇨ 차○○ 판사와 사촌관계
- 차○○ 부장판사가 차○○ 판사에게 아래의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설명
 - 현재 심리불속행결정을 할 때에도 일반 상고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건 기록을 검토하되, 결정문만 간이하게 작성하고 있을 뿐임 ⇨ 심리불속행제



도를 폐지하더라도 판결문을 작성하여 답변기능만 강화될 뿐이고, 상고심의 업무부담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님

- 차○○ 판사가 주장하는 ‘**상고허가제 + 법관증원론**’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경우 현재의 입법 상황에서 서기호 의원 등이 주장하는 ‘**대법관 증원론**’으로 연결되어 **왜곡될 위험**이 존재함

☑ 차○○ 부장판사의 설득 결과 ⇨ 실패

- ▶ 차○○ 부장판사가 지난 주말 각 2시간 정도씩 2회에 걸쳐 차○○ 판사와 통화하였으나 차○○ 판사 설득에 실패
- ▶ 차○○ 판사의 답변 요지(지난 주말: 8. 16.)
 - 상고심 기능 개선의 가장 이상적인 수단은 **상고허가제**인데, **상고법원**을 도입할 경우 **상고허가제 도입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법관 대폭 증원을 통한 업무경감**인데, **현재 대법원이 제시한 사실심 충실화 방안은 법관 대폭 증원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으므로 미봉책에 불과함**
- ▶ 답변 이후의 상황 ⇨ 차○○ 판사 8. 17. 코트넷 글 다시 게시
 - 법관 증원을 위한 판사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변호사들에 대한 판사 개개인의 설득이 필요함
 - 대법원이 마련한 사실심 충실화 계획은 상고법원안 통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함
 - 상고법원안은 상고허가제로 연결될 수 없음
 -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토론광장에서의 판사들의 토론 활성화를 위하여 차○○ 판사 본인은 당분간 글을 올리지 않겠음

② [2단계] 법관증원론에 대한 共感을 통한 戰線 이동 필요

“**법원행정처 v. 일반 판사**” ⇨ “**사법부 v. 법무부, 기재부, 국회**”

- 현재 차○○ 판사가 요구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법관 정원 증가에 대한 설명이 아님
 - 최대 500명의 법관 증원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독일 수준의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1.5배 ~ 3배의 법관 증원을 요구
 - 많은 판사들의 공감을 얻고 있음



- 법원행정처가 8. 11. 실시한 서울동부, 수원지법 법관들과의 간담회에서 도 다수의 법관들이 “상고법원 도입과 함께 하급심 법관의 업무부담도 줄여 나가겠다는 큰 틀의 정책이 같이 제시되면, 판사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음
- 대법원이 내심으로는 법관 증원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도 존재
-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법관증원론에 대해 공감을 표시할 필요 있음
 - 공감 표시만으로 판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음
 - 어차피 법관증원론은 법무부, 기재부, 국회의 반대로 실현이 쉽지 않음 ⇨ 대법원이 굳이 공감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판사들과 전선을 만들 필요 없음

☑ 법관증원론에 공감을 표시하는 대법원의 글에 포함될 내용

- ▶ 법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대법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 ▶ 대법원은 그동안 법관 증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
- ▶ 법관증원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
 - 판사들은 고급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음 ⇨ **국회 입법조사관들도 알 수 있는 수준의 입법과정에 대한 공개된 정보(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1소위 회의록)는 과감하게 판사들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회 등이 법관 증원을 심사할 때 사용하는 각종 기준(예: 접수사건 증가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있음
- ▶ 법관 증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다만, 상고법원에 집중되어야 할 에너지가 법관증원론 쪽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있음

③ [3단계] 집단적으로 사건 적체 결의하자는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이○○ 판사의 사망, 차○○ 판사의 코트넷 게시글 등으로 인하여 판사



들 사이에서는 집단적으로 사건 적체를 결의하자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음

- 법원행정처가 법관증원론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 법관 증원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경우, **상당수의 판사들은 그 대안으로 법원행정처가 사건 적체를 어느 정도 수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우려** 있음 ⇨ 대응 논리,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함 <끝>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2015. 9. 22.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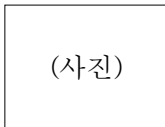
■ 차○○ 판사 진보성향 주간지인 시사인에 칼럼 투고

- 9월 초순경 시사인에 칼럼 투고 (총 5회 분량의 연재 칼럼 중 첫 회)
- 9. 14. ~ 9. 18. 첫 칼럼이 실린 시사인(주간지) 418호 출간
- 9. 21. 첫 칼럼이 온라인에 게시됨

2. 사건 경과

■ 8. 7. Facebook에 상고법원 관련 글 게시

- Facebook에 상고법원 및 사실심 충실화에 대해 고민 중이라는 글 게시



■ 8. 11. 코트넷에 글 최초 게시 ⇨ 법률신문 인터넷판 기사화

- “사실심 충실화 관련 판사 수 대폭 증원과 상고제한 추진 의견”

■ 8. 16. 차○○ 부장판사의 차○○ 판사 설득 ⇨ 실패

- 차○○ 부장판사(○○기, ○○○○지법, 前 사법등기국장, 차○○ 판사와 사촌관계)가 차○○ 판사 설득 시도하였으나 실패

☑ 차○○ 판사의 답변 요지

- ▶ 상고심 기능 개선의 가장 이상적인 수단은 상고허가제인데, 상고법원을 도입할 경우 상고허가제 도입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법관 대폭 증원을 통한 업무경감인데, 현재 대법원이 제시한 사실심 충실화 방안은 법관 대폭 증원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으므로 미봉책에 불과함

■ 8. 17. ~ 8. 31. 코트넷에 글 계속 게시 및 토론

- 문○○, 설○○ 부장판사 ⇨ 법관 대폭 증원론은 현실성 없다고 지적
- 차○○ 판사 ⇨ 개인적 인맥을 동원하여 기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

■ 8. 31. 시사인에서 차○○ 판사의 코트넷 게시 글 요약 보도

- 제목: “현직 판사, 5분 재판을 누가 승복합니까” (시사인, 416호)
- 진보성향의 시사인 편집팀은 상고법원에 확고한 반대 입장

☑ 시사인 8. 31.자 기사 중 사진에 대한 시사인 편집팀의 설명 부분

▶ 시사인 편집팀은 기사 중 사진에 대한 설명 부분에 “대법원은 상고법원이 만들어지면 대법원이 정책법원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사실상 ‘육상옥’, 4심 체제다. 전담 법원을 만들기보다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반대의견이 나오는 이유다.”라는 문구를 의도적으로 포함시킴

■ 9. 18. Facebook에 시사인과 법률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

- 차○○ 판사 자신의 노력이 언론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사진)

■ 9. 21. 시사인 온라인 판에 차○○ 판사 투고 칼럼 첫 회 게재

- 개인적 인맥을 동원하여 기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는 다짐의 실천인 것으로 보임
- 판사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다음 익명카페 “이판사판 야단법석”에 게시된 글 (9. 21.)

차○○ 판사님께서 언론에 내신 글입니다. 왠지 혼자서 고군분투 하시는 것 같아 죄송하네요. 생각하는 바를 추진하고자 하는 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53>



3. 차○○ 판사 시사인 칼럼의 내용

▣ 전체적인 내용

- 민사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는 차○○ 판사의 1주일 생활을 서술
- 과중한 업무량으로 하급심의 변론(5분 변론), 증거조사, 판결문 작성이 부실해지는 상황을 묘사
- 문제가 되는 내용은 칼럼의 뒷부분에 있음

▣ 차○○ 판사 칼럼 중 문제되는 내용

- 대법원은 이미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사실심 심리 관여를 많이 해왔음
- 상고법원이 법률심으로서 가진 권한을 넘어 더 충실히 사실심의 사실 판단을 깨는 월권적 행위를 해도, 사실심 판사들은 심리 강도를 높일 여유가 없음
-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사실심 충실화 대책은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변호사 단체 요구로 명목상 내놓은 것으로서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임
- 판사 수 대폭 증원이 해결책이나, 상당수의 법관, 특히 고위직 법관들은 판사 수 증원이 판사의 희소성을 떨어뜨려 사회 지위를 낮출 거라고 우려해 내심 반대하기도 함

☑ 차○○ 판사 9. 21.자 시사인 칼럼

“사실심인 1·2심이 사실판단 부분에서 심히 부실하니 원래 3심은 법률심이어야 하지만 사실 판단도 검토해줘야, 1·2심의 사실심 충실화가 가능하다.” 상고법원 찬성론 중에 이런 주장도 있다. 가능한 논리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판사들도 5분 재판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상시 야근, 주말 근무로 먹여 찬 상태로 일하는 판사가 많다. 상고법원이 법률심으로서 가진 권한을 넘어 더 충실히 사실심의 사실 판단을 깨는 월권적 행위를 해도, 사실심 판사들은 심리 강도를 높일 여유가 없다. 이미 대법원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으로 사실심 사실 판단 관여를 많이 했다. 하지만 사실심의 소극적 증거 채택의 심리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한국형 디스커버리(미국에서 당사자들이 주도해 서로 가진 증거자료를 현출시키는 제도) 등의 각종 사실심 충실화 대책도 결국 이 5분 재판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니 사실 대부분 판사도 별다른 감흥이 없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알 것이다. **스스로 원해서 내놓은 안도 아니고,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변호사 단체 요구로 명목상 내놓은 사실심 충실화 방안이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5년, 10년에 걸쳐 판사 수를 대폭(1.5~3배) 증원해, 5분 재판을 20~30분 재판으로 만들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사실심 충실화가 가능하다. 물론 나를 포함해 법관들도, 법관 수 증원과 더불어 기존 재판 모델에 안주하지 않고, 질 높은 새로운 재판 모델의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상당수의 법관, 특히 고위직 법관들은 판사 수 증원이 판사의 희소성을 떨어뜨려 사회 지위를 낮출 거라고 우려해 내심 반대하기도 한다.**

■ **칼럼 중 시사인 편집팀의 편향적인 편집 의도가 보이는 부분**

- 차○○ 판사의 칼럼 앞부분의 [편집자 설명] 부분, 칼럼 중간에 실린 [사진 설명] 부분에서 **시사인 편집팀의 편향적인 편집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 ‘상고법원 신설’과 ‘판사의 업무량 감소를 통한 사실심 강화’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고법원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일선 판사들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식의 구도로** 몰아가고 있음

☑ **차○○ 판사 9. 21.자 시사인 칼럼 中 편집자 설명 부분**

▶[칼럼 앞부분] 판사가 말하는 사건이 과중하다는 데는 다수가 동의한다. 갈리는 건 해법에서다. **대법원은 3심을 다루는 상고법원을 따로 만들자고 주장한다. 현장에서는 사실심을 강화해 항소·상고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고법원을 설치하느냐 마느냐의 양자택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모처럼 법원 개혁이 이슈가 된 만큼, 핵심 과제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재판을 제대로 받을 권리는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공익적 사안이다.

▶[사진1 설명] **대법원은 3심을 다루는 상고법원을 따로 만들자고 하고, 현장 판사들은 사실심을 강화해 상고를 줄이자고 주장한다.** 재판을 위해 입장하는 대법관들

▶[사진2 설명] **이미 대법원은 사실심 사실 판단에 관여를 많이 해왔다.** 위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 분석

① 부적절한 행동이나,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칼럼 중 부적절한 내용 ⇨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① “상고법원이 사실심의 사실 판단을 깨는 월권적 행위를 할 가능성 존재”
- ②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사실심 충실화 대책은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국회 의원과 변호사 단체 요구로 명목상 내놓은 것”
- ③ “고위직 법관들은 판사 수 증원이 판사의 희소성을 떨어뜨려 사회 지위를 낮출 거라고 우려해 내심 반대하기도 함”

- 법관윤리강령

☑ 법관윤리강령

▶ 제2조 (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 (법관의 직무외 활동)

① 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 (정치적 중립)

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 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권고의견 제7호)

법관은 SNS 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② 차○○ 판사의 열정을 시사인 편집팀이 악용하고 있는 상황

- 진보성향 주간지 시사인의 편집팀 ⇨ 한겨레, 경향 등 진보언론 및 민변 등과 동일하게 상고법원 반대 입장

▶ 현재의 대법원을 보수화된 대법원이라고 규정
 ▶ 상고법원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찬성, 반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
 ▶ 상고법원 도입은 자신들이 보수화된 대법원이라고 규정한 현재의 대법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음 ⇨ 상고법원 반대

- 차○○ 판사의 주된 관심은 “법관 증원을 통한 하급심 충실화”이고, 상고법원 반대는 부수적인 관심사임
- 그러나 시사인 편집팀은 차○○ 판사의 글을 “상고법원 도입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일선 판사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 ⇨ 이와 같은 의도는 “편집자의 설명”이나, “사진 설명”에서 명확하게 드러남

③ 차○○ 판사의 언론 활동과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논거①] 차○○ 판사는 자신의 계속된 문제제기로 인하여 의제를 설정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

☑ 차○○ 판사가 자신의 Facebook에 쓴 댓글 (9. 19.)
 ▶ 내가 글 올리고 나서 나는 많은 대화 중 현실성이 없다는 반론 외에 제대로 된 논박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글을 올린 후에 나온 법원 행정처 인사제도 개편안에 현재 업무 부담하에서 적정판사수에 대한 용역연구를 내년 1월에 시작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그 진정성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의제로 만드는 데는 성공한듯 하다. 그리고 난 직접 내가 현실성있게 만드는 노력을 해 보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간다. 한 5년 10년 후에 결과를 봐야겠지. 지켜봐주면 좋을 듯. 함께 해 주면 더 좋고. 그리고 그게 맞는 방향이라면 판사라면 맞다고 말하고 그길을 가는게 나는 정도라고 본다.

- [논거②] 차○○ 판사의 대학, 사법연수원 시절 활동 경력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한 끈질긴 추진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서울대 법대 96학번인 차○○ 판사는 법대 학생회, 법대 동아리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었지만, 서울대 도서관에서 고시공부를 하던 중에도 학내 성폭력 문제 등의 사안에 대하여 장문의 대자보를 쓰면서 논쟁을 하는 활동을 함 ⇨ **非主流 활동가 성향**
- 차○○ 판사는 2002년 고시공부 중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후부터 장애인 문제 개선을 위한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

☑ 동아일보, “시각장애인 사시 합격 도운 차○○ 씨 판사 임관 (2009. 9. 22.)

▶ 지난해 시각장애인으로는 처음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영 씨(28). 그의 아름다운 도전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차○○ 씨(32·사법시험 45회·사진)가 1일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차 씨가 시각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2년 11월. 1차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차 시험을 준비하던 그는 우연히 대학에서 열린 한 ‘장애인 영상제’를 보게 됐다. 당시 서울대는 특별전형으로 장애인 학생의 입학에 권장하고 있었지만 강의 여건이나 도로 상황 등은 여전히 불편했다. 영상제를 보고 충격을 받은 차 씨는 친구들과 함께 법대 동아리와 장애인 관련 동아리 4곳을 모아 ‘서울대 장애인권연대사업팀’을 만들었다. 그의 ‘장애인 사랑’은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2004년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해 2월 친구의 소개로 법대 후배인 최○ 씨를 만났고 함께 장애인사업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 얼마 뒤 최 씨는 결국 시력을 잃었다. ‘법조인의 꿈’조차 위태로웠던 그에게 차 씨는 ‘눈’과 ‘발’이 돼 주었다. **사법시험 원서 신청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법무부들에 연락해 응시 방법을 조율했다.** 최 씨가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면 이를 직원이 종이에 옮겨 적어 다른 수험생과 공평한 조건으로 채점을 받는 방식을 제안했고 받아들여진 것. **최 씨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차 씨는 사법연수원에 함께 찾아가 교수들과 최 씨의 연수원 적응을 위해 여러 방법을 마련했다.**

- 2003년에는 고시생 신분으로서 이라크 전쟁 반대운동 동참

☑ 문화일보, “반전운동 달아오른다” (2003. 3. 18.)

고시생들도 이라크전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서울대 출신 고시생으로 이뤄진 ‘고시생 대자보를 쓰는 모임’은 지난 주부터 반전스티커 붙이기, 반전깃발 달기 등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모임을 주도한 차○○(27·법대 대학원)씨는 “공부시간을 빼앗기지 않고도 반전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생활 속 반전운동을 생각해냈다”고 말했다.

5. 대응 방안



가. [총론] 전체적인 대응 방향

■ 선부른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논거①] 차○○ 판사가 시사인에 칼럼을 투고한 사실은 이미 국제인권법연구회, 다음 익명 카페(이판사판 야단법석) 등에 공지되어 많은 판사들이 알고 있음 ⇨ 법원행정처가 선불리 개입할 경우 판사들 여론의 逆風을 맞을 우려 존재
- [논거②] 많은 법관들이 이미 법률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 등에 칼럼 투고를 하고 있음 ⇨ 문제는 칼럼 투고 자체가 아니라 칼럼의 내용인데, 차○○ 판사의 칼럼에 대해 선불리 개입할 경우 법원에 불리한 칼럼을 투고하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 존재
- [논거③] 차○○ 판사의 칼럼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법관의 품위, 공정성, 자기절제, 균형잡힌 사고”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님 ⇨ 선부른 개입을 할 경우 법관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가능

■ 3가지 조치 필요

- ① 문제 부분에 대한 안내, ② 예의 주시, ③ 일선 판사들의 오해 불식

나. [각론] 구체적 대응방안

① 문제 부분에 대한 공식 안내

- 비공식적 채널(차○○ 판사와 사촌관계인 차○○ 부장판사)을 통한 논리적 설득 전략은 이미 사용하였으나 실패
 - “차○○ 판사가 존경하는 선배”를 찾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효용이 크지 않음
 - 다른 비공식 채널을 계속 가동할 경우, 법원행정처가 배후에서 계속 관여



한다는 인상을 차○○ 판사에게 줄 우려 존재

● 비공식적 채널 ⇨ 공식 채널로 방향 전환 필요

- 공식채널인 ○○지원장(최○○, ○○기)이 차○○ 판사의 칼럼 투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며, 문제 부분을 안내할 필요 존재

● ○○지원장 면담 시 포함될 대화 내용

- ① 칼럼 투고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 유지해야 함
- ② 5회 연속 칼럼을 게재하고, 수당을 받을 경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 [주의사항] 유용한 정보를 안내한다는 태도 유지 해야 함
- ③ 칼럼 투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법관윤리강령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7호의 취지를 유념하여 “법관의 품위, 공정성, 자기절제, 균형 잡힌 사고”를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주의 사항을 격려 내지는 덕담 형식으로 전달
- ④ 시사인에서 차○○ 판사의 칼럼을 게재할 때, “편집자의 설명” 부분과 “사진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차○○ 판사의 의도와는 달리 시사인 편집팀의 시각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을 안내

② 예의 주시

- 사태의 추이를 지켜 보면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 공식채널을 통하여 문제 부분에 대한 공식 안내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판사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 존재
- 차○○ 판사가 존경하는 선배, 차○○ 판사와 친한 선·후배 명단 취합·관리 필요

③ 일선 판사들의 오해 불식을 위한 노력 계속 추진

- 차○○ 판사의 글이 호응을 얻는 것은 일선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갖



는 불만이 크기 때문임 ⇨ 일선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대해 갖는 불만이 크지 않다면, 차○○ 판사의 글은 조용히 사라질 것임

-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개입은 “차○○ 판사”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일선 판사들의 상고법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야 함 ⇨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법원행정처장님 명의의 코트넷 공지사항 게시 등 판사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함
- 법관 업무량 감소에 대하여 판사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제시 필요 <끝>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2016. 3. 7.

기획조생실

1. 검토 배경

▣ 박○○ 판사(31기)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마 예정

- 서울중앙지법의 내규는 직급별 판사회의 의장을 의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관례적으로 최선임자가 의장이 되어 왔음

☑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서울중앙지법 내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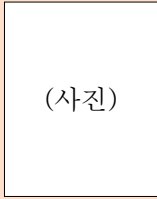
▶ 제9조(직급별 판사회의의 조직)

- ① 직급별 판사회의에 의장과 간사를 둔다. 부장판사 회의의 간사는 3인, 단독판사회의, 배석판사회의의 간사는 각 4인으로 한다.
- ② 직급별 판사회의의 의장은 당해 직급별 판사회의의 의결로 선출한다.

- 2014년 김○○ 판사(30기, 現 ○○지법 부장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에 출마하여 기존 관행을 깨고 투표에 의하여 최초로 의장으로 선출됨

☑ 김○○ 판사 프로필

- ▶ 現 ○○지법 부장판사 (30기, 생년월일)
- ▶ 現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 소신이 강하나, 절차를 중시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
 -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과 친분이 깊은 편은 아님
- ▶ [학력] 19○○년 ○○○고, 19○○ ○○대 법학과 졸업
- ▶ [경력]
 - 20○○년 ○○지법 판사, 20○○년 ○○○지법 판사
 - 20○○년 ○○○○, 20○○년 ○○○○, 20○○년 ○○○○지법 판사
 - 20○○년 ○○○○○ 파견, 20○○년 ○○○○지법 판사



- 2015년에도 김○○ 판사는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투표로 선출되기를 원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관례에 따라 최선임자인 장○ 판사(29기, 現



○○지법 부장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었음

- 2016년 3월 중순에 있을 단독판사회의의 경우 최선임자는 정○○ 판사(30기, 19○○년 생)이나, 박○○ 판사(31기, 19○○년생)가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의 지지를 받고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출마할 예정임

☑ 박○○ 판사 프로필

- ▶ 現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단독판사 (31기, 1966. 8. 30. 생)
- ▶ **前 우리법연구회 회원**
 - 2015. 4. 16. 게시판에 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글 게시
- ▶ [학력] 19○○년 ○○고, 19○○년 ○○대 경제학과 졸업
- ▶ [경력]
 - 20○○년 ○○지법 판사, 20○○년 ○○○○지법 판사
 - 20○○년 ○○지원 판사
 - 20○○년 ○○지법, 20○○년 ○○○○지법, 20○○년 ○○○○지법 판사

(사진)

▣ 박○○ 판사의 의장 경선 출마 경위

-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을 ‘판사회의와 같은 회의체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상반기에 출범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이용하여 판사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 법원조직법의 개정 없이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을 바꿀 수는 없으나, 판사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법원장이 권한을 스스로 일정 정도 내려 놓는 관행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박노수 판사의 경우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의 제안을 받고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가, 최근 출마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고 함

▣ 박○○ 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명의의 건의문, 성명서 채택

-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면서, 단독판사회의 명의로 ① 그와 같은 주장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거나, ② 만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원행정처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
-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 개정 시도
 - 김○○ 판사가 시도하였다가 좌절한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 개정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의 사법행정라인과 대립
 - ‘판사회의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각종 사법행정적 조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음

2. 대응 방안

▣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정○○ 판사 적극 지원

- 현재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정○○ 판사(30기, 19○○년생)가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음

☑ 정○○ 판사 프로필

▶ 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교통산재) 판사 (30기, 19○○년생)

▶ [학력] 19○○년 ○○고, 19○○ ○○대 공법학과 졸업

▶ [경력]

- 20○○년 ○○지검, 20○○년 ○○지청, 20○○년 ○○지검 검사

- 20○○년 ○○지법, 20○○년 ○○지원, 20○○년 ○○○○지법 판사

(사진)

- 정○○ 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핵심 그룹의 지원을 받는 박○○ 판사의 당선을 저지할 필요 있음

▣ 구체적인 지원 방법

- 핵심 그룹의 주장에 무관심한 다수의 일반 판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



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선거 공약 발굴 필요

☑ 선거 공약 아이템

- ▶ 단독판사의 복지 및 실질적인 지위 향상
- ▶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라인과 단독판사 사이의 실질적인 가교 역할 수행 (반목과 대립 지양)

● 지원단의 구성

- 김○○ 기획법관, 정○○ 판사(정○○ 판사와 같은 방 사용)

▣ 선거 전략

- 단독판사회의 경선 당일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정○○ 판사를 추천하고 지지 발언을 할 판사 섭외
- 정○○ 판사를 지지할만한 단독판사들(예: 형사단독판사)이 가급적 회의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 정○○ 판사의 경우 “단순히 최선임자로서 관례에 따라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단독판사들의 복지 및 실질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려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 <끝>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방안 (운영 측면 검토)

2016. 3. 14.

기획재2심의관실

1. 검토 배경

▣ 사법행정예 간섭을 목표로 판사회의를 이용하려는 조직적 시도 포착

- 국제인권법커뮤니티 내 인사모 활동
 - 2016. 2.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실시
- 2015. 12. 21. 인천지방법원 판사회의 내규 개정
 - 내부판사회의 의장 선출직으로 변경 / 내부판사회의 3회 소집 명시
- 2016. 2. 1. 송○○ 판사의 게시글
 -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
- 2016. 3. 14. 김○○ 부장판사의 게시글
 -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2차 건의문」

▣ 규칙/내규 개정 등 제도적 대응의 어려움

- 내부판사회의 폐지 등을 통한 판사회의 억제 시도 : 사실상 불가능
 - 핵심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일반 법관들까지 집단적 반발 가능
- 판사회의 활성화 취지의 내규 개정 주도 ⇒ 헤게모니 선점 : 실익 無
 - 가능한 안건 : 내부판사회의 의장 선출 / 판사회의 개최횟수 증대 등
 - 한계 : 헤게모니 선점 효과 미미 / 일회성 효과 / 내규 개정의 비가역성

▣ 판사회의의 적절한 운영을 통한 순기능 극대화 필요

- 인식의 전환 필요 : 제도적 문제 ⇒ 운영의 문제

2. 개념도



3. 세부적 방안 검토

가. 법원장 주도의 의견 수렴 및 안건 선정

▣ 현 상황

- 법원장의 판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
 - ⇒ 판사회의 관련 의견 수렴에 소극적
 - ⇒ 판사회의 논의 안건 부실
 - ⇒ 판사회의 무용론, 판사들의 무력감
 - ⇒ 판사회의 실질화, 내부판사회의 활성화 빌미 제공
 - 법원장에 대하여는 불통 이미지 고착
 - 사법행정에 관하여 “법원장 ⇔ 일선 법관” 전선 형성
- 법원장의 인식 전환 필요함

▣ 구체적 개선 방안

- 판사회의 전 법원장의 다각도의 의견 수렴 노력



- 편안한 간담회 등을 통하여 판사들의 ‘애로사항’ 청취 ⇒ 판사회의 안전 제출 독려
- 단체 메일을 통해 판사회의 안전 적극적 제출 독려
- 활발한 성향의 판사 등에게 안전 제출 부탁
- 활발하고 긍정적 성향의 판사에게 판사회의 안전을 제안해 보라 요구
- 해외연수 선발을 희망하는 판사들은 법원장의 부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임

■ 기대 효과

- 법원장의 소통 이미지 선점
- 안전 제출, 선정, 판사회의에서의 논의 진행 등 판사회의 관련 전 과정에서 법원장이 헤게모니 장악
- ‘법원장 - 일선 판사’ 사이의 소통 강화 ⇒ 우회 수단(내부판사회의 등)을 통한 소통 무력화
- 핵심 세력의 방안 :
기존 판사회의 안전 부실, 소통 부재
⇒ 소통에 관한 욕구불만 증대
⇒ 내부판사회의 개최를 통한 소통 욕구 자극
⇒ 소수의 법관이 내부판사회의 주도권 획득
⇒ 내부판사회의 명의 안전 제안
⇒ 전체판사회의에서 특정 보직의 전체 요구라 포장
⇒ 전체판사회의에서 논의 주도
- ‘법원장 - 일선 판사’ 소통 강화 ⇒ 위와 같은 매커니즘 무력화
 - 안전 풍부, 소통 강화 ⇒ 소통 욕구 충족 ⇒ 내부판사회의 활성화 명분↓
 - 전체 판사회의의 메인 이벤트 성격 강화 ⇒ 내부판사회의 중요도 감소
 - 법원장 수집 안전수 多, 소수 법관 주도 안전 小 ⇒ 법원장 논의 주도



나. 안건의 다양화

▣ 현 상황

● 논의 안건의 정형화

- 상반기 : 사무분담의 결과 보고, 전국법원장간담회 결과 보고
- 하반기 : 사무분담의 기본원칙 심의, 전국법원장회의 결과 보고

● 결국 관심의 초점 = 사무분담

⇒ 판사회의 : 사무분담을 둘러싼 법원장과 판사들의 전쟁터로 인식

▣ 구체적 개선 방안

● 생활 밀착형 다양한 아이템 발굴 ⇒ 안건화

- 판사들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한 발굴
- 타 법원에서 실시되는 사례 검토하여 선제적 발굴

● 발굴된 안건에 대한 심의 ⇒ 실질적 개선

● 사법행정위원회에 제안할 법원 명의의 안건 심의

▣ 기대 효과

● 판사회의에서의 무게중심 이동 :

“사무분담 등 인사문제” ⇒ “근무여건 개선 등 복지문제”

● 법원장과 판사의 관계 개선 : 대립적 관계 ⇒ 문제를 해결해주는 관계

● 판사회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 사법행정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심의

⇒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관심 증가

⇒ “법원행정처 - 법원장 - 일선 판사” 사이의 일관된 소통의 흐름 형성

다. 각급 법원 주요 행사의 실질적 심의



■ 현 상황

- 각급 법원의 주요 행사 : 상/하반기 체육행사, 전체 법관 워크샵, 대국민 소통행사 등
- 주요 행사의 결정 절차 : 법원장, 수석부장의 일방적인 결정
 - 워크샵 등 큰 행사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정해짐
 - 체육행사 관련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기도 하나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많음
- 법관들, 사법행정에서 소외감 느낌

■ 구체적 개선 방안

- 상반기 판사회에 ‘워크샵 논의 안건’, ‘워크샵 개최지/행사방안’, ‘체육 행사 장소’, ‘각종 소통행사에 대한 행사 종류 선택, 여부 결정’ 등의 심의 안건을 상정
 - 판사회의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지가 나와 있어야 함 (추상적/포괄적 논의는 오히려 유해할 수 있음)
- 하반기 판사회에서는 1년간 행사에 관한 평가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 가능

■ 기대 효과

- 논의 안건의 다양화에 기여
- 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에 관한 심의여서 관심을 높일 수 있음
- 법관들의 만족도 제고 : 사법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생각
- 법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통상 각종 행사 직전에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 준비 부족으로 행사 내용 부실화 초래



- 상반기 판사회의 전에 각종 행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법원 운영의 효율성 높일 수 있음

라. 심의 안건에 대한 **feed back** 강화

■ 현 상황

- 판사회의는 일회성 행사로 그침 ⇒ 판사회의 무용론 / 회의론

■ 구체적 개선 방안

- 이번 판사회의에서 전회 판사회의 심의 안건의 **처리 결과 보고**
 - 실제로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안건 보고
 - 처리되지 않은 안건 보고 및 **이유 설명** (아래 일반직 설명절차 참조)

■ 기대 효과

- 판사회의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속성 행사라는 이미지 정착
 - 사법행정에 관한 **안정적 의사소통구조** 확보
- 법원장이 판사회의에서 심의된 안건을 신중히 검토하였다는 이미지 제공

마. 일반직 직원에 의한 설명절차 도입

■ 현 상황

- 판사회의에서 설명하는 사람 : 법원장 또는 수석부장판사
 - 설명의 내용이 부정적인 경우 ⇒ 법원장/수석부장판사가 비난의 대상이 됨

■ 구체적 개선 방안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회의)

② 판사회의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사회의의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일반직 직원(사무국장, 총무과장 등)에 의한 **설명절차** 도입



- 회의 전에 제출된 안건 중 채택하기 어려움이 명백한 안건 :
법원장이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하기 보다는, 회의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일반직 담당 직원(사무국장, 총무과장 등)에게 회의장으로 오라고 하여 설명을 하게 함
- 이전 판사회의에서 긍정적으로 심의되었던 안건 중 실제로 집행하기 어려운 안건 :
차회 판사회의에서 일반직 담당 직원이 그 경위를 설명하게 함
- 일반직 직원에 의한 **현안보고 절차**를 두는 것도 검토 가능
- 벤치마킹 :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사법행정 현안보고 (전국 법원장간담회 / 사법행정위원회)

■ 기대 효과

- 일반직 직원들이 사법행정을 통해 **법관들을 지원**한다는 이미지 제공
- 안건으로 제안되었거나 판사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이 일반직에게 전달되어 실제로 검토되었다는 시그널을 정확하게 줌 ⇒ 만족도 제고
- 법원장은 중립적 이미지 취득, 부정적 답변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는 해당 실무자에게 **전가**

바. 부적절한 안건에 대한 의연한 대응

■ 현 상황

- 판사회의에서 **부적절한 안건** 또는 **의사진행발언**이 제기되는 경우 많음
 - 판사회의 내규를 부적절하게 개정하자는 취지의 안건
 - 사무분담기준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 기타 판사회의의 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을 초과하는 내용의 안건, 발언
- 부정적 상황에 대한 **대응 미숙**



- 문제 제기하는 판사는 용기있는, 민주적인, 이타적인 등 긍정적 이미지 획득
법원장은 보수적인, 폐쇄적인, 기득권자 등 부정적 이미지 낙인
- 법원장의 판사회회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 구체적 대응 방안

● 기본 전제에 어긋나는 주장 : 단호한 대응

-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에서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였고, 판사회회의는 자문기구로 둔 취지를 명확히 설명
- 사법행정의 ‘민주화’는 ‘판사의 뜻’에 따른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행정을 의미함 ⇒ 국민이 정한 법률을 거스르면서 ‘민주주의’ 논할 수 없음

● 기본 전제의 범위 내에서 제기되는 각종 주장 : 전략적이고 의연한 대응

- 내규 개정 요구에 관하여는 앞선 보고서 참조
- 그 밖의 다양한 주장에 대하여는 여유 있고, 의연한 태도로 대응 (자유로운 토론 진행, 의견 청취 등)

▣ 기대 효과

● 일선 법관들에게 사법행정, 판사회회의에 관한 헌법적/법률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시킴

- 일반 법관들은 기본적으로 ‘합법성’에 관한 민감성이 뛰어남 ⇒ 위법함이 명백한 주장에 대하여 쉽게 동조하지 않음

● 핵심 세력의 기본 구도인 ‘민주/비민주’ 프레임 역이용

- 판사들에 의해 사법행정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민주적’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함
- 오히려 헌법상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국민이 만든 법률에 부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판사회회의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비민주적’ 행위로 규정

● 이미지 싸움에서 우위 차지

- 부당한 요구 제기하는 판사 : 오히려 선동적, 감정적, 조직적, 독선적, 불법적 등 부정적 이미지 낙인
- 의연하게 대처하는 법원장 : 포용적, 합리적, 노련한 등 긍정적 이미지 획득 <끝>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성 검토

2016. 7.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법관 사회 내부 여론에 대한 점검 필요 時點임

● 법원문화개선위원회 공백기

- 5. 20. 정기회의 종료 ⇨ 9. 26. 임시회까지는 의견수렴 및 소통기능 미미함
- 법원문화연구반이 활동 중이나, 일종의 ‘TF’ 내지는 ‘선발된 인원들만의 회의’ 정도로서의 의견수렴 효과가 있을 뿐임

● 행정처도 내부 소통보다 20대 국회 대응에 진력해옴

- 업무보고 및 결산, 상임위 확정에 따른 입법 전략 수립 등 원구성 초기단계 기본대응 완료 ⇨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행정처 역량에 다소 여유 있음

● 각 법원 하계휴정기 및 하반기 인사이동

- 법원별 구성 일부 변화 등으로 여론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여지 있는 시점

■ 2015년 비공식 전국 순회 간담회 성공 노하우 활용 필요

● 2015. 8. 6. ~ 8. 13. 단독 및 배석판사 상대 총 8회 실시

- 상고법원 및 사실심 충실화에 관한 오해 불식 및 정보 제공, 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관하여 스킨십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함

● 확대 실시 ⇨ 2015. 9. 17. ~ 10. 5. 총 14회 실시

- 1차 간담회 호평에 따라 대상 법원 확대 및 부장판사로 대상 확대

■ 최근의 법관 여론을 살펴 2015년 상황과 대비한 후,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및 실시방안 검토 필요



2. 법관 사회 여론 동향 및 간담회 필요성

가. 최근 법관 사회 주요 이슈

▣ 최○○ 사건 외에 법원이 언론, 비판의 중심에 선 사례 많지 않음

- 전년도 같은 시기 여러 이슈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과 큰 차이

☑ 2015년 상반기부터 8월까지 논란되었던 주요 이슈

- ▶ 박○○ 대법관 제청, 경력법관 선발시 국정원 신원조사 파문, 상고법원 총력 추진 관련 비판, 원세훈 전합체 13 대 0 논란, 故 이○○ 판사 사망, 사법신뢰도 세계 최저 수준, 한명숙 판결 관련 정치적 거래說, 전 대법관 아들 초임지 특혜 논란 등
- ▶ 특정 사법행정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관 임용, 대법관 제청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 여러 차례 큰 논란 있었음

▣ 최○○ 사건에 대한 반응 ⇨ 사기 저하 속에서도 약간의 안도감

- 상식을 넘는 고액 수임료, 전관예우 비판 고착화, 판결의 공정성 훼손, 그에 따른 공정성 강화 조치 시행 등으로 사기 저하 및 자괴감 불가피

☑ 네이버 여성 법관 전용 카페 유스티티아 게시물 (2016. 5.)

- ▶ '요즘 이숨투자사기 사건이나 가슴기 살균제 사건을 보면, 참 답답하다. 법원이, 재판이 가해자와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피해자에게는 최소한의 구제만을 해 준다는 또는 그마저도 안해준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자신있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다는 자괴감이 든다
- ▶ 최○○ 변호사 수임사건 담당 재판부에 여성법관이 많다는 경향신문 기사 관련
 - 너무 화가 난다는 댓글 다수.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한 관계가 있을 듯 암시한 것에 대한 비판
- ▶ 육아·생활정보, 인사 정보의 교환이 중심이 된 위 카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 게시되고, 댓글이 달리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었음

- 다만, 금품수수나 향응접대 등이 추가로 드러나지 않는 데 대하여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상당함

☑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단독판사의 심정

- ▶ 이숨투자 대표에 대한 1심 4년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된 것은(최○○ 부장) 누가 봐도 위험한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 내내 그에 관한 구체적인 비위가 드러날까봐 정말 불안해서 주시했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넘어가게 돼 다행이다



▣ **대법관 제청 관련** ⇨ **비판적 법관들도 공개 반발은 어려운 상황**

- 이○○ 대법관 후임 관련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관심**이 컸음
 - ① 대법원 구성의 **확일화·보수화**에 대한 강한 비판, ② 여소야대로 인하여 국회 등의 주도권을 쥔 야당의 성향, ③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이○○ 대법관 후임, ④ **사법행정(담당 법관)에 대한 강한 불신**과 견제

☑ 법관 익명 카페 게시물 (2016. 5.)

- ▶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안건 수렴에 관하여) 왜 부장-배석간 문화가 문제되나?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권력서열주의 문제이다. 헌법에서 천명한 **법관의 독립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부장-배석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장과 대통령, 즉 행정권력과의 문제**이고, **대법원장 1인 인사독점체제 하에서의 법관 임용, 행정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차치하고 **깃털의 문제만을 건드리는 나 자신이 한심스럽다.**
- ▶ 사법행정이 재판업무보다 훨씬 중시되고 **행정업무를 담당 한 사람이 법관으로서 중시되는 반헌법적 현실 ...**
- ▶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판사가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데 동의하나? 법관의 꽃 고등부장? 기수별 선두그룹? 이런 식의 **법관서열화**가 당연시되고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처 출신의 대법관 임용을 반대**하고, 평생 재판 일선에서 근무한 **"정통법관"만을 대법관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 **행정처 출신의 극소수가 사법행정권을 독점하면서 재판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현실**은 판사회의의 유명무실화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 ▶ 현행 법령에 따라 가능한 방법 중 **대법관후보나 대법원장 후보를 실질적인 판사회의를 통해 추천하는 것을 실현**한다면 진정으로 법관의 독립 실현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인권법 커뮤니티 소모임 '인사모'의 5월 주제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행정"이었음

- 제청결과에 대한 반응 ⇨ 만족하지 못하나 비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 **교수 출신, 학문적 위상, 전북 출신, 온화한 인품** 등으로 인하여 비판세력으로서도 크게 문제삼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임

☑ 진보 성향 언론의 미세한 입장 변화

- ▶ **제청 다음날** 한겨레와 경향 모두 '교수 출신 민법 권위자'라는 의의를 평가하면서도 '서울대, 법관 경력, 50대 남성'으로 대법관 다양화 효과 미미하다는 평가 게재
- ▶ 한겨레는 이를 후 '후보자가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박정희 정권을 유신독재로, 국가보안법을 반민주악법으로 각 표현한 행적이 눈길을 끈다**'는 기사 송출
 - 단 이○○ 법조팀장이 후보자가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인 점 등에 관해 비판기사 준비



중

☑ 진보 성향 한○○ 교수의 평가 (제청 당일 밤 페이스북)

- ▶ [인격] 모두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을 외유내강의 성품, [학문] 착실하고, 해박함
- ▶ '보수적이라고 세평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개방적이다.'
- ▶ "이번 대법관 후보 참 잘 뽑았다". 연령상으로도 후보군 중 가장 젊은 편인데, "대법관 다양성"에의 여론도 그의 선정에 일조한 듯 하기도 하다.
- ▶ 사법부로서는 크게 잘 된 일이란 점에 한점 의혹이 없다. 난 김대법관의 판결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다.

☑ 선출을 통해 취임함으로써 법관 여론 주도 명분을 가진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의장(박○○ 판사)의 경우 ⇨ 표면적으로 언급 없음

- ▶ 최근 서울중앙 단독판사들과의 식사자리 등에서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 없었음 ⇨ 자신이 추진 중인 '좋은 재판 연구회' 활동에 집중
- ※ 박 판사의 경우 학생운동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초임지가 서울중앙임에도 재판연구관이 되지 못한 것때문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측면이 크므로,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마시 슬로건인 좋은 재판, 행복한 판사 관련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는 평 있음

☑ 경향 신문 움직임 주시할 필요

- ▶ 경향은 최근인 7. 13.에도 공무원단체가 실시한 다면평가를 근거로 '대법원장 39점' 등과 같은 자극적 기사와 사실을 게재함
- 공무원단체측 확인결과 현재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노조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 진보 성향 법관이 경향에 제공하였을 것이라는 분석
- 경향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 문제제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원 내 비판적 그룹도 반대 견해를 표면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임

■ 다수 법관의 최대 관심사는 (지방근무, 평정 등 인사, 복지 문제 외에)

① 부장-배석 관계, ② 법관의 위상·사기 저하로 인한 무력감에 있음

- 법원행정처장 명의 6. 16.자 재판 공정성 강화 방안 코트넷 공지글
⇨ 한 달이 경과하였음에도 **조회수 단 917건에 불과**
- 여론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감한 주제였음에도 법관 사회 관심 미약**
- 법관들의 가장 진솔한 정서가 표출되는 법관 익명 카페의 분위기 변화
- 2015년에는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수십 개의 댓글이 자주 달린 반면, 2016년에는 1~7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부장과 배석 관계(부장의 부당한 행동 방지책 등)나 개입제한 이슈에 대하여는 여전히 수십 개의 댓글이 활발하게 달리고 있음**

■ ⇨ 결국 사법행정·대법원이 직접 이슈·불만의 중심에 있다기보다는,



법관으로서 직무·생활·미래에 대한 불안·불만에 무게중심이 가 있음

나. 2016년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필요성

▣ ① 2015년 대비 행정처 주도 특급 정책 이슈는 감소 ⇨ 그럼에도 여전히 전한 **‘소통, 특히 傾聽의 필요성’**

● 2015년 간담회는 법관들 입장에서 ① **‘법원행정처의 일방적 필요에 의한’** ② **‘주입식 설명을 위한 행사’**로 받아들일 여지가 큰 상황이었음

- 그럼에도, 소규모 인원·식당에서 만찬을 곁들인 대화 등의 편안한 형식을 통해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인위적 행사라도 행정처와의 **소통 자체가 반갑다**’는 반응 등으로 인해 **긍정적 평가 가능**했음

● 행정처 당면 과제가 없더라도 지속적 소통 노력 필요

- ‘행정처는 **자신들이 필요한 경우에만 소통을 내세운다**’는 **선입견**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큼
- 특정 사법정책 이슈를 내세울 필요가 없으므로 오히려 **설명·설득보다 전면적인 경청에 방점**을 둘 수 있는 상황임

● ⇨ 행정처 **불통 이미지 해소·소통 이미지 강화**

▣ ② 비공식 소규모 간담회의 효용이 예상보다 큼

● ① **정보와 정서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

- 주요 정보 전달 창구로 활용되어 온 코트넷 공지 및 안내 메일 등 ⇨ 다수 법관의 무관심으로 **조회수 및 피드백 매우 저조**함
- 법원장을 통한 간접적 정보 전달·전파 ⇨ 행정처가 **직접 소통하고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
- 문서로 공유하기 어려운 법관으로서의 동질감 및 정서적 공감대 형성 가능

☑ 2015년 시행 결과 드러난 예상 외의 성과

▶ 본래 목적은 상고법원 관련 오해 해소, 정확한 정보 전달, 내부 관심도 및 공감대 형성이었음 ⇨ 이를 넘어서 **행정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내지 경원시하는 태도 해소,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향상** 등에도 부수적 효과 있었음



- **소규모 쌍방향 소통**과 긴밀한 스킨십으로 인해 가능한 효과임
- 2000년 00지법 기획법관의 경우 종전에는 사법행정 분야에 전혀 무관심하다가, 작년 간담회 참석으로 사법행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올해 기획법관을 맡아 00 민사재판장 동요 사태 등에서 역할을 잘 수행함 ⇨ 사법행정 적합 인재 발굴에도 도움
- ▶ **일부 법관들의 편향적 정보 취사선택 문제 해소**
 - 코트넷으로 상세하게 공지하여도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 익명 카페 등에 나타난 비공식적 정보를 더욱 신뢰하는 성향 있음 ⇨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충분한 비공식 간담회에서는 그와 같은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 ▶ 사법행정 성과 및 사법부 발전사항 홍보에도 활용 가능
 - 글로는 쉽게 하기 어려운 홍보도 술자리의 분위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행가능함

● ② 사법행정역량 투입 규모 대비 성과 업

- 부장심의관 및 평심의관 1인당 최대 2회 정도의 저녁 시간 투입
- 2015년 전국 법관의 9.6%에 달하는 273명(법원장 제외)이 참석 ⇨ 2016년 유사 규모로 시행시 누적인원으로 전국 법관의 약 20%와 직접 소통하는 결과

● ③ 일선 법관들의 만족도 업

- 앞서 본 긴밀한 소통으로 인한 여러 장점 외에 특히 지방권의 경우 먼 곳에 출장간 것만으로 정보적·정서적 소외감 및 무관심을 완화시키는 효과 있음
- 젊은 법관들의 경우 선배들과의 대화·교류의 장으로서도 의미 있음

● ④ 법관 사회 여론 또는 법원 조직 및 재판운영상 문제점 등의 선제적 파악을 통한 적기 대응 가능

- 대강당 등에서의 설명회와 달리 다양한 주제에 관한 대화를 통해 진솔한 여론, 비공식적 애로사항 등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음

■ ③ 사법행정위원회와 상호 보완 및 선순환 시스템 형성 필요성

● 사법행정위원회 공식 출범

- 일선 법관들이 직접 사법행정 자문 과정에 참여한다는 큰 장점
- 반면, 위원회 제도의 내재적 한계상 위원으로 선출되지 아니한 법관들의 무관심 초래 가능성 있고, ‘위원회 하나 만들고는 소통 소력을 다했다는 것이냐’ 는 비판 제기될 우려도 있음



- 행정처의 직접 소통 수단 별도로 필요 ⇨ 사법행정위 보완 및 선순환

3. 2016년 간담회 착안사항

▣ 전년도의 소규모 형식 등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되, 아래 사항 고려

▣ 대법원장님 임기 중 마지막 간담회 가능성 ⇨ 소프트한 주제가 적정

- 대법원장님의 임기 중 업적·대표적 키워드 및 브랜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임 ⇨ 법관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지지 여론 구축 필요

- 전 대법원장님의 경우 ‘공판중심주의, 구술심리, 전자소송, 법관인사 이원화’ 등의 브랜드 있음

- 현재는 ‘평생법관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분쟁의 종국 해결기능 강화 (사실심 충실화)’ 등이 있으나, 법관 사회와의 소통 측면에서 문제제기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상당함

- 법관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법관들의 애로사항, 직업적 고민 등에 귀 기울이는 접근 방법 필요함

- 복지 관련 이슈는 물론, 부장-배석간 문제, 법관의 사회적·업무적 위상 약화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

-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사법부 수장이 이를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시그널을 줄 필요 있음 ⇨ 현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법관 사회 평이 좋지는 아니함

☑ 법관 익명 카페 게시물

▶ 대법원장님의 말씀 등에 대한 반응

- 모든 판사가 자신의 아래 직원인가요?
- 법원에서 가장 소통이 안 되시는 분
- 판사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느껴졌고, 너무 관료주의적이라 당황했다
- 전임 회장님과 현 회장님 사이의 간극이 크게 와 닿는 것 같다

▶ 이에 대하여 '분위기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인 편차가 크다. 정보가 없어서 오해하고, 과잉 내면화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더 소통이 필요하다'는 댓글이 문제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음

- 최○○ 사태 및 사법 신뢰 악화를 주제로 하더라도 사법신뢰 제고



필요성보다는 그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식의 접근방법 필요

▣ 배석판사들의 대거 참여 유도 필요

- 2015년 간담회는 상고법원 관련 사법부 one-voice 필요성이 주된 고려사항 ⇨ 언론 및 외부 접촉이 활발한 단독판사 및 부장판사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음
- 2016년 간담회는 경청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만큼, 현재 법관 조직의 가장 말단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법관 조직에 대하여 불만이 가장 큰 배석판사를 대거 참여시킬 필요 있음

☑ 법관 익명 카페 배석판사 관련 게시글

- ▶ 배석판사는 판결쓰는 기계인가
- ▶ 사법부의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 ▶ 우리 기수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4. 구체적 일정 등 로드맵 ⇨ 기획조정실 별도 보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2016. 3. 28.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현재 각 고등법원별로 위원 추천 절차 진행 중

- 위원 추천 기간: 3. 14.(월) ~ 4. 1.(금)

■ 핵심 그룹의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폼하 ⇨ 사법행정위원회가 '의례적 기구', '들러리'라는 프레임 구축 중

- 핵심 그룹 ⇨ 사법행정위원회가 실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지켜보지도 않은 채, 사법행정위원회가 구성되기도 前에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폼하하면서 “의례적 기구”, “들러리”로 명명하며 부정적인 프레임 구축 중

☑ 김○○ 부장판사의 3. 25.자 코트넷 게시글

- ▶ “사실 사법행정위원회가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추진하는 의례적 기구**가 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은 ... ”
- ▶ “현행과 같은 규칙 아래서는 **법원행정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들러리**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 경과

- 1. 29.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
 - 송○○ 판사 발표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방안에 관한 소고”
- 2. 1. 송○○ 판사가 코트넷에 1차 건의문 게시
 -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댓글 등록
- 2. 15. 김○○ 부장판사가 법률신문에 “판사와 사법행정”이라는 칼럼 기고
- 2. 23. 경향신문에 송○○ 판사의 건의문 소개하는 기사 게재

- 2. 26.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
 - 김○○ 부장판사, “판사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홍○○ 판사, “각급 법원 판사회의 내규 분석 및 개정안 제시”
- 3. 7. 경향신문 온라인판에 사법행정위원회 비판하는 기사 게재
 - 박○○ 기자,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직접 선출 외면한 법원행정처”
- 3. 14. 김○○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2차 건의문 게시
- 3. 21. 박○○ 판사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당선
- 3. 23. 경향신문에 김○○ 부장판사의 2차 건의문 소개하는 기사 게재
- 3. 25. 김○○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공지글 다시 게시
 -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박○○ 판사가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 등록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 고등법원에 대한 지원 불가피

- 사법행정위원회가 실제 구성되면, 핵심 그룹은 위원 위촉 결과를 두고 다시 문제제기를 할 것임
- 각 고등법원장이 이른바 ‘왕당파’로 불리는 법관(예: 행정처 심의관, 기획법관·공보관, 수석부 배석판사, 해외 유학 선발 경력 등을 보유한 법관) 위주로 위원 추천할 경우 ⇨ 핵심 그룹에게 공격 기회 제공하는 셈
- ① 사법행정위원회의 출범 의의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② 핵심 그룹의 공격으로 위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
- 아래와 같은 법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고등법원장에게 정보 제공함으로써 핵심 그룹의 악의적 폄하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필요 있음
- ①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가 있으면서도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
- ② **법관 사회에서 상징성**이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법관
- ③ **정치적 색깔이 없으면서도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법관



2. 후보자 추천 기준

가. 전제조건

▣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

- 독선적이거나,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법관은 제외

나. 적극적 기준

▣ [1]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 ⇨ **진보 성향 법관** 그룹의 명단 분석

- 우리법연구회 前, 現 회원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 노동법 커뮤니티 회원

▣ [2] **법관 사회 상징성** ⇨ **여성 법관 명단 분석 및 장애 가진 법관 포함**

- 젠더법 커뮤니티 회원 명단
- 시각 장애를 가진 최소 판사

▣ [3] **오피니언 리더 역할** ⇨ **행정처 심의관들의 추천 취합**

- 특정 그룹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소속 법원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법관 발굴

다. 소극적 기준

▣ **특정 보직 경력** 있는 법관은 가급적 배제

- 법원행정처 심의관
- 각급 법원 기획법관·공보관, 수석부 배석판사
- 미국 등 선호 하는 지역의 유학 경력 있는 법관



3. 후보자 추천 명단

가. 명단

■ “별지”와 같음

■ 추천 순위

● 1순위 ⇨ 적색으로 표시

- ①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 ②법관 사회 상징성, ③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두루 고려할 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 2순위 ⇨ 청색으로 표시

- 그 중요도가 1순위까지에 이르지 않는지만, 유력한 후보군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법관

● 3순위 ⇨ 흑색으로 표시

- 그 밖에 ①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 ②법관 사회 상징성, ③오피니언 리더 역할 중 어느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 법관

나. 법원문화개선위원회

1) 고등권역별/직급별 위원 배분

구분	서울고등 관내	4개 지방권 고등 관내				합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고등부장		1				1
지법부장 고법판사	2	1	1	1	1	6
고법/지법배석 단독판사	5	1	1	2	1	10
합계	7	3	2	3	2	17



2) 추천 후보자 배치(안)

구분	서울고등 관내	4개 지방권 고등 관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고등부장	민○○(젠더법) 여○○(젠더법)	윤○○(젠더법)			노○○(젠더법)
지법부장 고법판사	윤○○(우리법) 문○○(인기)		유○○(우리법)		
고법배석 지법배석 단독판사	김○○(우리법) 정○○(젠더법) 서○○(우리법) 황○○(인권법) 손○○(인기) 류○○(우리법) 지○○(인기)	이○○(젠더법)			

▣ 윤○○ ○○고등법원 부장판사(형사항소)

-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 3. 14.자 코트넷 게시글을 통하여 법원문화개선위원회 고등부장급 위원은 대전 관내에서 선출할 예정임을 공지한 상태
 - 고등부장급 위원은 사실상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됨
- 대전 관내 고등부장 중 “①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 ② 법관 사회 상징성, ③ 오피니언 리더”와 같은 요건을 갖춘 법관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

☑ 대전 관내 고등부장판사 명단

- ▶ [대전고등] 허○○, 이○○, 이○○, 최○○, 유○○, 윤○○, 이○○(청주)
- ▶ [특허법원] 김○○, 김○○, 박○○, 이○○, 오○○

- 위원장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여성’ 법관인 윤○○ 부장판사가 대전 관내 고등부장판사 중 위원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됨
 - ‘여성’ 법관이 위원장으로 위촉될 경우 ⇨ 핵심 그룹 및 그 지원 세력이 위원회 구성에 異議하기는 어려움
 - 다만, 윤○○ 부장판사의 경우 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경력 및 ②



상대적으로 낮은 기수(23기, 초임 고등부장판사)가 短點

- 代案으로는 ‘여성’ 고등부장판사 중 ① 민00(18기, 現 젠더법연구회 회장), ② 노00(19기, 前 우리법), ③ 여00(21기) 부장판사 고려 가능
 - 다만, 대안 택할 경우 이미 공지한 사항을 번복해야 한다는 부담 존재

■ 윤00 0000지법 부장판사(민사합의)

-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상징성 보유 ⇨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어필
- 강경한 주장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문00 0000지법 부장판사(민사합의)

- 칼럼 투고, 저서 출판, 강연 등으로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인기
 -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도 반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인물
- 위원 위촉 자체로 사법행정위원회 흥행에 도움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경력, 우리법연구회와 관련 없음
 - 강경한 주장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정00 0000법원 판사(가사단독)

- 여성 판사의 대표로서의 상징성 보유
 - 유스티티아 시습(여성 판사의 네이버 커뮤니티), 젠더법연구회 前 총무
- 정치적 성향 없음 ⇨ 온건하고, 합리적인 주장할 것으로 기대
 - 제3기 법원문화연구반 참여 경력

■ 지00 0000법원 배석판사(형사항소부)

- 특별한 대외활동 하지 않으나 평소 활발한 성격으로 모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
- 제도법관개선토론폰방에도 꾸준히 댓글 올리면서 사법행정에 많은 관심



다. 재판제도발전위원회

1) 고등권역별/직급별 위원 배분

구분	서울고등 관내	4개 지방권 고등 관내				합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고등부장	1					1
지법부장 고법판사	2	1	1	1	1	6
고법/지법배석 단독판사	5	1	1	2	1	10
합계	8	2	2	3	2	17

2) 추천 후보자 배치(안)

구분	서울고등 관내	4개 지방권 고등 관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고등부장	김○○(우리법)				
지법부장 고법판사	최○○(우리법) 김○○(우리법) 이○○(우리법) 정○○(우리법)		김○○(인권법)	송○○(우리법)	장○○(우리법)
고법배석 지법배석 단독판사	박○○(인기) 문○○(우리법) 윤○○(인권법) 류○○(인권법) 윤○○(우리법) 이○○(우리법)			최○(시각장애) 오○○(인권법)	차○○(우리법)

▣ 김○○ ○○고등법원 부장판사(행정항소)

-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한 ‘상징성’ ☞ ‘진보’ 성향 법관에게 어필
 - 송○○ 판사가 믿고 따르는 선배
-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지도 교수(2004~2006)
 - 35~38기까지 진보 성향 법관에게 영향력(예: 홍○○ 판사)



-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 ≡ 강경한 주장 정리하여 합리적 결론 도출할 것으로 기대
- 최○○ ○○○○지법 부장판사(민사합의)
 -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한 ‘상징성’ ≡ ‘진보’ 성향 법관에게 어필
 - 온건한 성향 ≡ 강경한 주장 정리하여 합리적 결론 도출할 것으로 기대
- 장○○ ○○○○법원 ○○지원장
 - 우리법연구회 그룹의 핵심 ≡ 송○○ 판사 등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 보유
 - 前 청와대 행정관, 대법원 재판연구원, 인천지법 기획법관
 - 전략적 사고에 능하나, 주장이 강경한 편은 아님
- 박○○ ○○○○○○법원 판사(형사항소부)
 - 정치적 성향 없고, 대외활동 하지 않음
 -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 논리적으로 밝히는 오피니언 리더
 -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 신망 높음
- 최○ ○○○○법원 판사
 - 장애에도 불구하고 밝고 합리적인 성격
 - 시각장애인으로서 상징성 보유 <끝>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적색 1순위, 청색 2순위, 흑색 3순위)

1	김○○	○○고등 고법부장	17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노동법	▶기본적으로는 보수 성향이지만,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 송○○ 판사가 믿고 따르는 선배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지도 교수(2004~2006) - 35~38기까지 진보 성향 법관에게 영향력(예: 홍○○ 판사)
2	노○○	○○고법 ○○재판부	19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3	박○○	○○고등	20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4	오○○	○○○○ 수석부장	21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온건한 성향
5	이○○	○○지법 ○○지원장	22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지역법관 ☞ ○○ 지역 법관들에게 신망 두텁다고 함
6	박○○	○○지원장	22	19○○	○○○○고	○○대 법학	젠더법 인권법	▶여성친화적 가치관과 소탈한 성품으로 여성법관들에게 신망 ▶젠더법연구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몇 안 되는 남성법관임
7	윤○○	○○고등 고법부장	23	19○○	○○○○고	○○대 법학	젠더법	▶(-)사법정책심의관
8	고○○	○○○○	23	19○○	○○○○고	○○대 법학	인권법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여성법관들에게 신망 있음 ▶강한 리더십 발휘하거나 활동 범위 넓은 편은 아님 ▶夫 이○○ 전 부장판사
9	이○○	○○○○	24	19○○	○○○○고	○○대 법학	젠더법	▶소장 법관들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소장 법관들 의사를 대변 해 주는 젊은 스타일의 부장으로 신망 높음 ▶夫 이○○ 前부장판사
10	윤○○	○○○○	24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법원행정처 공보관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11	김○○	○○○○	24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인권법 노동법	▶(-)민사정책심의관,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12	김○○	○○고등 고법판사	25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민사정책심의관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13	신○○	○○고등 고법판사	25	19○○	○○○○고	○○대 법학	젠더법	▶(-)사법연수원 정책연구교수, 夫 백○○ 재판관 ▶여성 후배들 사이에 신망 두텁고, 여성문제에 있어 진보적 성향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진보적 성향 뚜렷하지 않음
14	최○○	○○○○	25	19○○	○○○○	○○대 경영	前 우리법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온건한 성향
15	문○○	○○○○	26	19○○	○○고	○○대 법학	現 우리법	▶현 우리법연구회 회장, 强性
16	문○○	○○○○	26	19○○	○○고	○○대 법학	인권법 젠더법	▶(-)사법정책심의관 ▶소탈하고 젊은 리더십으로 소장 법관에게 인기 많음 ▶위원 위촉 자체로 사법행정위원회 흥행에 도움
17	장○○	○○고등 고법판사	26	19○○	○○고	○○대 법학	現 우리법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사법연수원 정책연구교수
18	김○○	○○고등	26	19○○	○○○○고	○○대 법학	現 우리법 노동법	▶송○○ 판사와 가까움 ▶(-)夫 오○○ 부장판사
19	이○○	○○지원	27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진보 성향 법관들에 대한 영향력은 弱함 ▶(-)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20	이○○	○○지법	27	19○○	○○고	○○대 법학	現 우리법	▶2010년 우리법연구회 명단공개 무렵 가입하여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
21	이○○	○○고등 고법판사	27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인권법	▶(-)형사정책심의관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22	정○○	○○○○원	27	19○○	○○○○고	○○대 법학	現 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强性 ▶夫 황○○ 변호사(공감) ▶(-)전략적 사고에 능함
23	장○○	○○지원장	28	19○○	○○고	○○대 물리	前 우리법	▶前 청와대 행정관 ▶(-)지원장, 인천지법 기획법관 ▶우리법 연구회 그룹의 핵심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 보유 ▶전략적 사고에 능하나, 주장이 강경한 편은 아님

24	박○○	○○지법	28	19○○	○○고	○○대 공법	現 우리법	▶우리법연구회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나, 온건한 편
25	권○○	○○○지법	28	19○○	○○고	○○대 물리	우리법	
26	신○○	○○지원장	29	19○○	○○사범대 ○○○고	○○대 독문	인권법 젠더법	▶서울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젠더법 커뮤니티 학술 팀장
27	신○○	○○○○	29	19○○	○○○○고	○대 법학		▶출산 및 육아 관련 상징성(5자녀)
28	송○○	○○지원	29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노동법	▶부장된 후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평가
29	유○○	○○지법	29	19○○	○○○고	○○대 법학	現 우리법	▶근평연임연구반
30	김○○	○○지법	30	19○○	○○고	○○대 행정	現 우리법	▶근평연임연구반, 强性
31	김○○	○○지법	30	19○○	○○○○고	○○대 법학	인권법	▶서○○ 판사 연임 탈락에 반발하는 글 코트넷에 게시 ▶(-)민사판례연구회
32	박○○	○○고등	31	19○○	○○○○고	○○대 법학	우리법	▶前 우리법연구회 간사, 强性
33	서○○	○○○○	32	19○○		○○○ 법학	現 우리법	▶(-)現 서울동부 기획법관, 공보관 ▶우산회 간사
34	곽○○	○○○○	32	19○○	○○고	○○대 경영	現 우리법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나, 온건하고 조용한 편임
35	원○○	○○○○	32	19○○	○○○○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妻 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6	정○○	○○○○	32	19○○	○○ ○○○고	○○대 영문	인권법 젠더법	▶유스티티아 시습(전국 여성판사의 네이버 커뮤니티) ▶前 젠더법연구회 총무 ▶여성 판사들 사이에서 대표성 있음 ▶제3기 법원문화연구반
37	최○○	○○○○	32	19○○	○○ ○○○고	○○대 법학	인권법	▶활달하고 합리적인 성격

38	박○○	○○○○	33	19○○	○○고	○○대 법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성향 없고, 대외활동 하지 않음 ▶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 신망 높음 ▶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 논리적으로 밝힘 ▶ (-)前 ○○지방법원 기획법관, 스탠포드 방문과정
39	임○○	○○○○	33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 (-)前 ○○○○법원 기획법관
40	황○○	○○○○	34	19○○	○○고	○○대 법학	인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의 창에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의견 제출 ☞ 적절한 의견 개진 방식 준수하는 온건파 ▶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경선에서 박○○ 판사 지지 ▶ 제3기 법원문화연구반
41	문○○	○○지원	34	19○○	○○○○ ○○고	○○○ 법학	現 우리법 노동법	▶ 노동법연구회 부시습
42	윤○○	○○○○	34	19○○	○○○○고	○○○○○○ 대학	인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법연구회 부시습, 기획팀 제1총무 ▶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경선에서 박○○ 판사 지지(핵심) ▶ 자유분방하고 직설적인 면은 있으나 선을 넘는 편은 아님 ▶ 동생 윤○○ 영화감독(범죄의 재구성 등)
43	김○○	○○지원	34	19○○	○○○고	○○대 법학	인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을 하는 등 자유분방한 성격 ☞ 문화에 대한 상징성 ▶ 코트넷에 답글을 다는 등 사법행정위원회에 관심 많음
44	이○○	○○지원	34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45	차○○	○○지원	35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인권법 노동법	
46	홍○○	○○○○	35	19○○	○○○○○○ 고	○○대 법학	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개설자 ▶ 우리법연구회 핵심 그룹, 強性 ▶ 夫 김○○ 판사(재판연구관)
47	최○○	○○고등	36	19○○	○○○고	○○대 법학	인권법	▶ 밝고 차분한 성품, 합리적
48	류○○	○○지원	36	19○○	○○○고	○○대 법학	인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법연구회 활동 활발하게 함 ▶ 夫 김○○ 부장판사
49	오○○	○○지법	36	19○○	○○○고	○○대 법학	인권법	▶ (-)민사판례연구회

50	전○○	○○지법	36	19○○	○○고	○○대 법학	前 인권법 젠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夫 최○○ 사법정책심의관 ▶젠더법커뮤니티 부총무
51	박○○	○○○	37	19○○	○○고	○○대 법학	現 우리법	▶우리법연구회 활동 활발하게 하나, 온건한 성격
52	박○○	○○○	37	19○○	○○○○고	○대 사회생활	인권법	▶활달하고 대외관계 폭이 넓음
53	윤○○	○○○	37	19○○	○○○○고	○○대 법학	現 우리법 인권법	▶우리법연구회 활동 활발하게 하나, 온건하고 겸손한 성격
54	이○○	○○지법	37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외협력팀장 ▶夫 이○○판사
55	이○○	○○○○	37	19○○	○○고	○○대 법학	인권법	▶妻 이○○ 판사
56	윤○○	○○○○	38	19○○	○○고	○○대 소비자	인권법	
57	손○○	○○지법	38	19○○	○○고	○○대		▶특별한 대외활동 하지 않지만, 소속 법원의 모임 주도
58	이○○	○○지법	38	19○○	○○고	○○대 법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젊은 여성 법관들과 폭넓은 네트워크 보유 ▶(-)민사판례연구회, ○○○○지법 민사수석부 근무
59	황○○	○○지원	39	19○○	○○고	○○대 법학	우리법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나, 온건한 성향
60	류○○	○○지법	40	19○○	○○고	○○대 시각	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소신 뚜렷하고 재치 있는 스타일로 신세대 법관 정서 대변
61	황○○	○○지법	40	19○○	○○고	○○대 법학	인권법	
62	최○	○○지법	41	19○○	○○고	○○대 법학	인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에도 불구하고 밝고 합리적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상징성
63	지○○	○○지법	41	19○○	○○지법	○○대 법학		▶특별한 대외활동 하지 않지만, 소속 법원의 모임 주도
64	이○○	○○○○	41	19○○	○○고	○대 법학	인권법	▶적극적인 성격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적색: 1순위 검토, 청색: 2순위 검토, 굵은 흑색: 3순위 검토, 얇은 흑색: 검토하지 않은 추천자]

1	(사진)	이○○	법원직위재판부 (이하 열 삭제)	가수(생년) (이하 삭제)	○○고 ○○대 법학	인권법 노동법	▶ 사법정책연구심의관,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2	(사진)	윤○○			○○고 ○○대 법학	前우리법 인권법	▶ 사법연수원 교수, ○○지법 공보관, 법원행정처 공보관 ▶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3	(사진)	김○○			○○○고 ○○대 법학		▶ 夫 ○○○(前우리법) ○○○○지원장 ▶ 지역거점법관(○○)
4	(사진)	문○○			○○고 ○○대 법학	인권법 젠더법	▶ 사법정책심의관 ▶ 소탈하고 젊은 리더십으로 소장 법관에게 인기 많음 ▶ 위원 위촉 자체로 사법행정위원회 흥행에 도움
5	(사진)	문○○			○○○○고 ○○○대 법학	前우리법 인권법	▶ 경력법관(검사, 2001~2005) ▶ 지역거점법관(○○) ▶ 우리법연구회 前 회원이기는 하나, 활동을 활발하게 한 것은 아님
6	(사진)	최○○			○○○○고 ○○대 종교학	인권법	▶ 경력법관(검사, 1999~2009)
7	(사진)	김○○			○○○○고 ○○대 법학	인권법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 판사 연임 탈락에 반발하는 글 코트넷에 게시 ▶ 민사판례연구회
8	(사진)	류○○			○○고 ○○대 노어노문학		

9	(사진)	정○○			○○ ○○○고 ○○○영문	인권법 젠더법	▶유스티티아 시습(전국 여성 법관 네이버 커뮤니티), 前젠더법연구회 총무 ▶여성 판사들 사이에서 대표성 있음 ▶제3기 법원문화연구반
10	(사진)	김○○			○○○○고 ○○대 전기공학	노동법	
11	(사진)	권○○			○○고 ○○대 경영	인권법	
12	(사진)	하○○			○○고 ○○대 법학		
13	(사진)	이○○			○○○○고 ○○대 법학		
14	(사진)	류○○			○○○○고 ○○대 법학		
15	(사진)	경○○			○○○○고 ○○대 법학		
16	(사진)	류○○			○○○○고 ○○대 시각디자인	現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소신 뚜렷하고 재치 있는 스타일로 신세대 법관 정서 대변
17	(사진)	김○○			○○○○○○고 ○○대 국사		

재판제도발전위원회

[적색: 1순위 검토, 청색: 2순위 검토, 굵은 흑색: 3순위 검토, 얇은 흑색: 검토하지 않은 추천자]

1	(사진)	김○○	법원직위재판부 (이하 열 삭제)	가수(생년 (이하 삭제)	○○고 ○○대 법학	前우리법 노동법	▶기본적으로는 보수 성향이지만,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 송○○ 판사가 믿고 따르는 선배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지도 교수(2004~2006) - 35~38기까지 진보 성향 법관에게 영향력(예: 홍○○ 판사)
2	(사진)	구○○			○○고 ○○대 법학		▶경력법관(변호사, 1998~2005) ▶지역거점법관(○○, ○○)
3	(사진)	이○			○○고 ○○대 법학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역거점법관(○○)
4	(사진)	이○○			○○고 ○○대 법학	前우리법 인권법 노동법	▶형사정책심의관 ▶활발하게 인권법 활동 ⇨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5	(사진)	장○○			○○고 ○○대 법학	前우리법	▶○○지법 기획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재조) ▶前 청와대 행정관, 우리법 연구회 그룹의 핵심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 보유 ▶전략적 사고에 능하나, 주장이 강경한 편은 아님
6	(사진)	조○○			○○고 ○○대 법학		
7	(사진)	유○○			○○고 ○○대 법학	現우리법 인권법 노동법	▶근평연임연구반
8	(사진)	신○○			○○고 ○○대 법학		▶2006년 ○○○ 부장판사 배석 경험
9	(사진)	박○○			○○고 ○○대 경영		▶제3기 법원문화연구반
10	(사진)	홍○○			○○○○고 ○○대 법학	現우리법 인권법	▶비밀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개설자

						노동법 젠더법	▶우리법연구회 핵심 그룹, 强性 ▶夫 ○○○ 판사(재판연구관)
11	(사진)	송○○			○○○○고 ○○대 법학		▶强性이라는 평
12	(사진)	박○○			○○고 ○○대 법학		
13	(사진)	윤○			○○고 ○○대 법학		시아버지 ○○○ 변호사(태평양)
14	(사진)	장○○			○○○○고 ○○대 법학	인권법	
15	(사진)	백○○			○○고 ○○대 법학		
16	(사진)	류○○			○○고 ○○대 사회학	인권법	
17	(사진)	이○○			○○○○고 ○○대 법학	인권법 노동법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

2016. 4. 4.

기획조정실

1. 추천 과정

■ 3. 14. 코트넷에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로 위원 추천 절차 안내

- 고등법원장이 권역별·직급별 배정인원에 맞추어 후보자 단수 추천
⇒ 법원행정처장이 추천된 후보자 위촉
- 단수 추천으로 정책 결정한 이유
 - ① 고등법원장의 위원 후보자 복수 추천 후 법원행정처장이 선별 위촉할 경우 위원 선정을 행정처가 좌우한다는 이미지 구축될 우려
 - ② 출범 초기 단계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고등법원장의 추천권을 존중하는 외양을 보여주는 전향적인 자세 필요 ⇒ 핵심 그룹이 구축하고자 하는 ‘어용’, ‘들러리’, ‘의례적 기구’ 프레임 탈피
 - ③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는 안전의 성질상 強性 위원이 위촉되더라도 추후 설립될 다른 위원회(사법정책기획위원회, 법관윤리심의위원회)보다 위험성이 弱함 ⇒ 부작용은 안전 선정으로 통제 가능

☑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에 관한 안내 말씀” (3. 14.자 코트넷 공지글)

▶ 위원은 고등법원장이 관내 법관 중에서 추천한 분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게 됩니다.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다양한 지역과 보직의 법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고등법원장이 추천할 법관의 수와 보직을 위원회별로 안배**하였습니다.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고등법원장들께서는 4. 1.까지 관내 법관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기수, 성별, 해당 위원회의 소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자를 후보자로 추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추천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원 위촉절차와, 위원장 지명절차를 진행하여 위원회 구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3. 16. 각 고등법원에 위원 추천 의뢰하는 공문 발송

■ 3. 28.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 고등법원에 대한 지원

●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핵심 그룹의 악의적 폄하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고등법원장에게 아래와 같은 법관에 대한 정보 제공

- ①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가 있으면서도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
 - ▣ (예)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노동법연구회 등 소속 법관
- ② **법관 사회에서 상징성**이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법관
- ③ **정치적 색깔이 없으면서도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법관

☑ **고등법원장에게 추천한 법관**

▶ **[법원문화]** 윤○○, 문○○, 정○○ 등, **[재판제도]** 김○○, 최○○, 장○○ 등

■ 4. 1. 각 고등법원에서 위원 후보자 추천

- **[1서울고법]** 관내 지법에서 45명 추천받아 그 중 15명 추천
 - 관내 지법에서 서울고법에 추천할 때 위원회 특정하지 않았으나, 서울고법이 법원행정처에 추천할 때에는 **위원회 특정**
 - ▣ 단, 희망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
 - 관내 지법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법관은 서울고법에서 **가급적 추천**
- **[2대전고법]** 관내 지법에 배수로 추천해도 좋다고 하였으나, 관내 지법에서 대전 권역에 **배정된 인원만큼만** 추천해 와서, 그대로 5명 추천
 - 관내 지법 직급별 **판사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음
- **[3대구고법]** 관내 지법에서 8명 추천받아 그 중 4명 추천
- **[4부산고법]** 관내 지법에서 12명 추천받아 그 중 6명 추천
 - 부산지법의 경우 직급별 **판사회의** 개최되었음
- **[5광주고법]** 관내 지법에서 7명 추천받아 그 중 4명 추천



2. 추천 결과

가. 법원문화개선위원회

1	(사진)	이○○	법원/직급/ 재판부 (이하 열 삭제)	기수 (생년) (이하 열 삭제)
2	(사진)	윤○○		
3	(사진)	김○○		
4	(사진)	문○○		
5	(사진)	문○○		
6	(사진)	최○○		
7	(사진)	김○○		
8	(사진)	류○○		
9	(사진)	정○○		

10	(사진)	김○○	법원/직급/ 재판부 (이하 열 삭제)	기수 (생년) (이하 열 삭제)
11	(사진)	권○○		
12	(사진)	하○○		
13	(사진)	이○○		
14	(사진)	류○○		
15	(사진)	경○○		
16	(사진)	류○○		
17	(사진)	김○○		



나.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번호	사진	이름	법원/직급/ 재판부 (이하 열 삭제)	기수 (생년) (이하 열 삭제)
1	(사진)	김○○		
2	(사진)	구○○		
3	(사진)	이 ○		
4	(사진)	이○○		
5	(사진)	장○○		
6	(사진)	조○○		
7	(사진)	유○○		
8	(사진)	신○○		
9	(사진)	박○○		

번호	사진	이름	법원/직급/ 재판부 (이하 열 삭제)	기수 (생년) (이하 열 삭제)
10	(사진)	홍○○		
11	(사진)	송○○		
12	(사진)	박○○		
13	(사진)	윤 ○		
14	(사진)	장○○		
15	(사진)	백○○		
16	(사진)	류○○		
17	(사진)	이○○		



3. 분석

가. 법원문화개선위원회

구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고등부장		이○○(22)			
지법부장 고법판사	윤○○(24) 문○○(26)	문○○(27)	김○○(29)	김○○(25)	최○○(28)
고법/지법배석 단독판사	류○○(32) 정○○(32) 권○○(36) 류○○(39) 류○○(40)	경○○(39)	하○○(36)	이○○(36) 김○○(41)	김○○(36)

■ 현황

- 지법부장 이상 7명 v. 단독판사 이하 10명
- [고법부장 1명, 지법부장급 6명] v. [단독판사급 6명, 배석판사 4명]
- 남성 10명 v. 여성 7명

■ 문제점

- 36기 법관 편중 ⇨ 4명

나. 재판제도발전위원회

구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고등부장	김○○(17)				
지법부장 고법판사	이○○(27) 조○○(28)	구○○(24)	유○○(29)	이○○(26)	장○○(28)
고법/지법배석 단독판사	신○○(33) 박○○(34) 홍○○(35) 송○○(36) 류○○(41)	이○○(41)	윤○○(38)	박○○(37) 백○○(39)	장○○(39)



■ 현황

- 부장판사 이상 7명 v. 단독판사 이하 10명
 - [고법부장 1명, 지법부장급 6명] v. [단독판사급 6명, 배석판사 4명]
- 남성 11명 v. 여성 6명

■ 문제점

- 여성 부장판사 없음
- 주류 법관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부장판사 부족
 - [진보] 이○○, 장○○, 유○○
 - [일반] 구○○, 이○, 조○○ ⇨ 구○○, 이○ 부장판사가 強性이라는 평가

다. 총평

1) 긍정적 요소 (총론에서는 성공적)

■ ① 핵심 그룹의 공세 선제적으로 차단

- 핵심 그룹 등 진보 성향 법관들의 호응을 얻을만한 법관들이 충분히 추천되었음 ⇨ **핵심 그룹은 최소한 ‘위원 구성 문제’에 관한한 더 이상 사법행정위원회를 폄하할 명분 없음**

☑ **핵심 그룹의 호응을 얻을만한 법관들**
 [법원문화] 윤○○, 문○○, 김○○, 정○○, 류○○
 [재판제도] 김○○, 이○○, 장○○, 유○○, 홍○○

■ ② 흥행 요소 구비 ⇨ 위원회 출범 의의 고양

- 법관 사회에서 인지도 높은 법관이 위원으로 참여 ⇨ 사법행정위원회 흥행에 도움

☑ **법관 사회에서 인지도 높은 법관**
 ▶ 문○○, 류○○ 등



2) 부정적 요소 (각론에서는 일부 보완 요소 발생)

- ① **고등법원장 단수추천** ⇨ **위촉권자인 법원행정처장의 재량 부존재**
 - 기수, 성별 균형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지역, 직급 균형은 반영 가능)
 - 법원문화연구회의 경우 일부 기수 편중 현상 발생 ☞ 36기 4명
 - 부적격자 배제 불가능
- ② **이른바 주류의 입장을 대변할 실력 있는 법관이 적음**
 - 특히 ‘재판제도발전위원회’의 경우가 문제됨
 - [법원문화] 이○○, 윤○○ 부장판사의 역할 기대 가능함
 - [재판제도] 김○○, 이○○ 부장판사가 어느 정도 역할할지가 관건
- ③ **특정 권역의 고등법원장이 추천한 고등부장이 사실상 곧바로 위원장이 되는 결과**
 - (예) 서울고등법원장 ⇨ 김○○ 부장판사 추천 ⇨ 법원문화개선위원장
 - (예) 대전고등법원장 ⇨ 이○○ 부장판사 추천 ⇨ 재판제도발전위원장

4. 개선 방안

가. 단기

1) 특정 기수 중복 현상 해결

- **가능한 방안**
 - [1안] 위원회간 위원 교체
 - 법원문화개선위원회의 36기 4명 중 1명을 재판제도발전위원회와 교체
 - ▣ [서울고법] (법원문화) 권○○ ⇨ (재판제도) 송○○, 홍○○, 신○○
 - ▣ [대구고법] (법원문화) 하○○ ⇨ (재판제도) 윤○



❖ [부산고법] (법원문화) 이○○ ⇔ (재판제도) 박○○, 백○○

❖ [광주고법] (법원문화) 김○○ ⇔ (재판제도) 장○○

● [2안] 위원 추가 추천 요청

- 36기 위원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 대구, 부산, 광주고등법원장에게 31기, 33기, 34기, 37기, 38기 중 각 1명의 위원을 추가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

❖ 31기는 위원이 전혀 없음, 33, 34, 37, 38기는 재판제도에 1명만 있음

■ 검토의견 ⇨ 위원회간 위원 교체

● 2안(위원 추가 추천 요청)의 경우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할 우려 존재

- 출범 초기 단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고등법원장의 추천권을 존중하는 의양을 보여주기 위하여 고등법원장 단수 추천으로 정책 결정한 상황

- 위원 추가 추천을 요청할 경우 법원행정처가 위원 추천에 깊게 관여한다는 오해 발생 가능

● 1안(위원회간 위원 교체)의 경우 아무런 문제 발생 소지 없음

- 서울고등 권역에서 지방법원장이 고등법원장에게 위원을 추천할 때 ‘위원회’를 특정하지 않았음 ⇨ 각 위원회는 고등법원장이 임의로 정한 것임

- 법원행정처장이 특정 기수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등법원장이 정한 소속 위원회를 일부 수정하는 것에는 문제 발생할 소지 없음

2) 주류의 입장을 대변할 실력 있는 법관 확보

■ 가능한 견해

● 고등법원장에게 부장판사급 위원 1명씩 추가 추천 요청

- 교체 대상 후보군

❖ [재판제도] 조○○, 구○○, 이○ 부장판사

❖ [법원문화] 최○○ 부장판사(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 추가 추천 후보군

- 황○○, 호○○ 부장판사, 신○○ 고법판사 등

■ **검토 의견** ⇨ **현상 유지**

- 부장판사급 위원 추가 추천 요청을 할 경우 법원행정처가 고등법원장의 추천권 행사에 깊게 관여한다는 오해 발생 가능
-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의 경우 예민한 안전이 상대적으로 적음 ⇨ 부작용 발생 가능성 낮음

나. 증장기

1) 기본 방향

■ **초기 인선 과정에서 나타난 기술적 문제점 보완**

- 특정 기수 편중 현상 해결 위해서는 위촉권자인 법원행정처장의 재량권 행사 불가피
- 추후 출범할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사법정책기획위원회의 경우 초기 출범한 위원회(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와 달리 예민한 안전이 많음 ⇨ 특정 성향 판사가 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 존재

■ **위원 추천 과정에서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법원장이 직급별 판사회의 의장에게 위원 추천을 포괄 위임하는 것은 지양 ⇨ 판사회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되, 위원 추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장이 해야 함

2) 구체적 개선 방안

■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장에게 2배수 이상 추천**

- 지방법원장이 고등법원장에게 위원을 단수로 추천할 경우, 지방법원의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법관이 그대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음

- (예) 대전고등법원의 경우 지방법원장이 고등법원장에게 단수 추천

■ 법원행정처에서 위원 후보군(Pool) 마련하여 각 고등법원과 사전 협의

- 발언력이 강한 특정 성향 법관이 위원회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피해야함 ⇨ ① 진보 성향 법관 후보군을 사전 검토하였듯, ② 이른바 주류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법관 후보군도 사전 검토하여 대항마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각 고등법원과 사전 협의

■ 고등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2배수 추천

- 각 고등법원장이 단수 추천한 결과 ① 지역, 직급 균형은 반영 가능하나, ② 기수, 성별 균형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고, 실제로도 특정 기수 편중 현상이 발생하였음 ⇨ ① 기수, 성별 안분 및 ② 대표성 확보에서 중대한 문제점 발생
- ① 기수, 성별 안분 및 ②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고등법원장으로부터 2배수 정도의 위원을 추천받아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불가피 ⇨ 추가로 출범할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사법정책기획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위와 같은 방침 적용

■ 위원회 구별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므로, 법원행정처장이 소속 위원회 변경 가능

■ 고등부장판사는 모든 권역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1명씩 추천

- 특정 권역에서 추천한 고등부장판사가 곧바로 위원장이 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 있음 ⇨ 법원행정처장의 재량권 확보 <끝>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1. 프로필

- ▣ 연수원 ○○기(상세는 별첨 자료 참조)

2. 성향

- ▣ 전체 사법제도, 인사시스템 등 관심 多

- 특히,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심 ⇨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
- 2012. 7. 김○○ 대법관 임명 제청의 철회를 요구하는 글 게시
- 2014. 8. 권○○ 전 차장의 대법관 제청 당시, 최고엘리트 법관이 아닌 인권 등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법조인에게 문호를 개방했으면 한다는 글 게시
- 2015. 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 게시

- ▣ 정세판단에 밝은 전략가형

- 속칭 '낄 때, 안낄 때' 판단이 밝아,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침묵
- 동기인 유○○ 판사는 현장의 필드 플레이어 성격이 강하다면, 송 판사는 배후 기획, 정리, 분석, 전략수립 등에 더 밝음
-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었다가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자 우리법 연구회 탈퇴함

- ▣ 집행부에 대한 불신 및 의혹 多

- ○○지법 내 사무분담 편성시에도, 사무분담 하나하나에도 의혹제기

- ▣ 선동가, 아웃사이드 비평가 기질

- 이슈 발생시 주변 법관들을 선동하는 기질 다분



3. 자유게시판 게시글

■ 2009. 3. '사법부를 흔드는 두가지 손' (촛불재판 의혹 규명 촉구)

- "의혹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서울중앙지법) 수석 부장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

■ 2010. 1. 27. '정기인사에 앞서 법원장님들께 올리는 글'

- "(최근 사의를 표명한 법원장님들이) 사의를 거둬주시고 고법의 재판장으로 돌아가 주시면 안 되겠느냐"며 일정 기간 법원장을 지낸 뒤에는 다시 고법 부장으로 돌아가 재판을 맡다 퇴임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
- "대법관 제청도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고법 재판장으로 근무하시는 법관님들 중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렇게만 되면 법원장님들이 사법부 독립을 흐리는 일체의 세력, 그들의 낯선 비난에 단호히 맞서 후배 법관들을 지켜주시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느냐"

■ 2011. 11. 29. 최○○ 부장판사의 FTA 강행처리 비판 글 게시 이유 윤리위 회부에 대해 비판 글 게시

- "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많은 판사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

■ 2012. 7. 24.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하여" (김○○ 대법관 임명제청 철회 요구)

- "후임 대법관의 임명을 위한 청문회를 거친 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저는



사법부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 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올해 초 법원은 모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두고 커다란 홍역을 겪었다.”, “일선 판사 한 명의 재임용에 대해 유독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던 대법원이 현재 상황에서 왜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2014. 8. 권○○ 당시 차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한 글

- 2003년 ‘제4차 사법과동’은 법원 내부의 자발적인 역량들이 모여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거쳐 사법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으로 평가될 것”
- “다음 번 대법관 제청 때는 최고엘리트 법관이 아닌 인권이나 노동,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법조인에게 문호를 개방했으면 한다. 법원 내·외부의 이런 요청이 적극 반영되기를 호소한다”

■ 2015. 1. 15.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한 의견”

- “이번 추천 결과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했던 2011년 취임사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인지 냉철한 자성과 반추가 필요하다”며 초심을 강조, 대법관 후보 제청을 위해 법원 안팎의 여론을 다시 수렴할 것을 요구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 보고

2015. 2.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판사들이 회원인 인터넷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장

- 다음(Daum) 포털사이트에 판사들이 회원인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개설
- 여러 판사들이 회원 가입하여 익명으로 사법부 관련 현안, 법관인사, 특정 판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 개진
-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지나치게 직설적인 표현 등 부적절한 게시글 존재

▣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활동 현황 파악 ⇨ 대처 방안 강구

- 카페 개설 경위, 현재 활동 수준, 게시글 내용 등 분석
- 적절한 대응 방안 수립

2. 카페 현황

가. 개요

▣ 카페 개설

- [개설일] 2014. 10. 24.
- [개설 경위] ‘여성 판사 네이버 카페’의 회원이었던 몇몇 여성 판사들이 익명에 의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통 등을 목적으로 카페 개설
 - ❖ 네이버 카페에는 익명에 의한 글 게시 기능 부존재



☑ **‘여성 판사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이판사판 야단법석’ 다음 카페 개설 안내글 일부**

- ▶ “용기와 체념의 양자택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정리되지 않은 생각도 말하고 듣고, 고쳐말하고, 또 그것을 재판에 녹여내고 공유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부담없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 “그것을 가능케하는 조건은 아마도 **비공개성과 익명성**, 그리고 **신뢰** 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관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가입하여 **익명으로** 아주 시시껄렁한 **일상의 애환**부터 정의(특히 회복적 정의를 중심으로)와 **재판, 사법에 대한 담론**들도 부담없이 **소통하고자 하는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카페명은 ‘이판사판야단법석’입니다.** 네이버에는 익명게시판 기능이 없어서 다음에 만들었는데 댓글에 한 메일 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초대장을 보내겠습니다.”

■ **카페 운영자**

- 최초 카페 개설자는 창원지법 **홍○○ 판사**(여, ○○. ○. ○○.생, 연수원 35기, 2. 23.자로 ○○지법 전보 예정)로 추측
- 현재 홍 판사 포함하여 **7명의 운영자**가 카페 관리
 - ❖ 운영자들이 신규 회원 가입 승인, 부적절한 게시물 삭제 등 권한 행사

■ **회원 현황**

- 회원 수 2015. 2. 현재 **384명**
 - ❖ 카페 개설 당시 초기 회원 40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 ❖ 여성 판사가 다수일 것으로 예측되나, 게시물 내용 등에 비추어 남성 판사 회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임
 - ❖ 대부분 **평판사**로 구성, 다만 극소수의 부장판사도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 완전 배제할 수 없음
 - ❖ 회원 중 퇴직자는 운영자들이 강제로 카페에서 **탈퇴**시킴
- 회원 가입 절차
 - ❖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회원초대요청 게시판에 회원초대요청 댓글 게



시(이때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 기재)

- 운영자가 위 이메일 주소로 연수원 기수와 이름을 질문하여 법관 여부 확인 후 회원 가입시킴
- 회원 가입 후 1주일 내 운영자가 신규 회원 법관 코트넷 메일을 통해 회원 가입 여부 확인

■ 카페에서의 의사 소통

- [업무 Q&A], [인사연수정보], [정의의 플랫폼], [세상 보기], [잡수다게시판], [책창고], [도와주세요], [운영게시판] 등 7~8가지 게시판으로 구성
- 각 게시판에 1인이 글을 게시하면, 그에 대하여 다른 회원들이 댓글을 달는 방식으로 의사 소통 및 정보 공유
- 모든 게시글과 댓글은 익명으로 게시하여, 운영자들도 특정 글 게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음
- 회원인 법관들 사이의 의사소통공간임을 명시하고, 게시글 등 내용의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주요 게시판 개요
 - [업무 Q&A 게시판] ⇨ 판결문 작성 방법, 증인신문방식, 주요 대법원 판례 등 업무 관련 정보 공유
 - [인사연수정보 게시판] ⇨ 인사발령, 해외연수에 관한 의견 등 피력
 - [정의의 플랫폼 게시판] ⇨ 상고법원 설치, 대법관 임명제청 등 사법부 관련 최근 이슈에 관한 의견 제시
 - [세상보기 게시판] ⇨ 어린이집 폭행 사건, 도둑뇌사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등 최근 사회적 이슈에 관한 의견 제시

나. 문제의 소지 있는 주요 게시 글 및 댓글

■ 상고법원 설치 관련



☑ **'상고법원안의 미래' (2015. 2. 2.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상고심 개편, 넘어야 할 산은?... 몇가지가 있다... 먼저, 3심제 아래에서 **3심을 대법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관념과 국민들의 인식은 그 자체로 헌법규범으로 승인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일 법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전격적으로 위헌 결정이라도 하게 되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관계에서 완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법관 증원 후 재판소원 허용’이라는 대법원 수뇌부가 가장 우려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하급심 강화’라는 양승태 코트의 목표와도 배치될 우려가 있다.** 상고심에서의 파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급심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상고심에서의 파기가 없다면, 외부적으로 굳이 상고법원을 왜 만들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준대법관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없지 않고, 대법관들 역시 이들의 존재 자체를 탐탁치 않게 여길 우려도 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 위해서는 간단히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이해하기 어렵고 일견 ‘뭘지?’라고 생각이 드는 제도는 도입하기 어렵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고 물었을 때 선뜻 답이 망설여진다면, 그 제도 역시 도입이 어렵다.... **상고법원은 어떤 제도인가? 우리 스스로가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덧글 19개] ⇨ 대부분 게시글 내용에 공감한다는 취지

☑ **'상고법원안 다시보기2' (2014. 12. 3.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상고법원안의 우려 지점... 상고법원안의 대표발의자는 판사 출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으로 소위 ‘친정’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다. 다소 우려스럽거나 걱정되는 점은 **대표발의자의 친동생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민감한 시기에 특히 **중요한 인사대상자의 친형이 대법원의 숙원사업에 관한 법률안의 대표발의자라는 점은 걱정되는 지점이 없지 않다...** 상고법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제도의 특성상 그곳은 ‘준대법원’으로 기능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소속 판사들은 **대법관에 준하는 지위와 대우를 획득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판결을 통해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재판연구관들로 견제 및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법원의 생리와 재판부 독립의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상고법원은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의 대법원이 되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



이 있다.”

[댓글 4개] ⇨ 대부분 게시글 내용에 공감한다는 취지

■ 원세훈 형사사건 선고 관련

☑ '원세훈 항소심 선고' (2015. 2. 9.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2시간 동안 판결을 읽고 계신 듯 한데, 그러면 결국 실형인가요? 지금까지 나온 속보 문구를 종합하면, 집행유예 선고하기엔 너무 이상한데...”

[댓글 22개] ⇨ 대부분 실형 선고에 찬성한다는 취지

“징역 3년 법정구속, 속이 시~원한다!!”

“간만에 속이 확 풀리는 소식이네요”

“김○○ 부장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판사답다...”

■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관련

☑ '대법관 임명제청되신 분에 대해 기사가 났군요' (2015. 2. 3.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이런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여러모로 가슴이 답답한 하루입니다”

[댓글 13개] ⇨ 대부분 대법관 임명에 부정적인 의사표시

“낙마에 한표요”

“이분이 대법관이 되신다면 같은 법관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질 것 같아요”

“전임과 후임이...”

■ 쌍용차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관련

☑ '쌍용 해고노동자들을 생각하며' (2014. 11. 13.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저 역시 한명의 노동자로서, 노동 3권이 이리도 허망한 문구에 불과함을 새삼 확인한 하루인지라 오늘이 더더욱 춥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더 할 수가 없는 건 강요된 침묵이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일까요**”

[댓글 14개] ⇨ 대부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

“법이란게 원래 차가운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법을 운용하는 방식이 차가운 걸까요? 법조인으로서 이런 결말을 피해갈 길이 확실히 있긴 했던 걸까



요?”

■ 법원인사 관련

☑ '판사임용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납득하지 못하는 시스템' (2014. 12. 20.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법조계가 증오와 적대감이 가득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생존 문제, 매년 쏟아지는 변호사 문제, 판검사 임용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불합격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법조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증오와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댓글 9개] ⇨ 대부분 법관임용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사무분담' (2014. 12. 17.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지원에서의 사무분담시준은 미니정치판을 뛰어넘어 동물의 왕국 수준의 스펙타클함을 보여주는 듯. 강한 자가 살아남는건지 살아남는자가 강한건지...”

[댓글 19개] ⇨ 대부분 지원 사무분담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3. 대처 방안

가. 대처 필요성

■ 언론 등으로부터의 비판 소지 사전 차단

- 최근 이○○ 부장판사의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법관의 인터넷상의 표현 행위에 대하여 언론 등 국민의 관심 집중되어 있는 상황
- 법관이 회원인 인터넷 카페의 존재 자체가 알려질 경우, 그 게시글 내용 등에 대하여 언론의 집요한 취재 예상 ⇨ 언론 등에 게시글 내용이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
- ❖ 회원 가족이나 지인인 기자, 검사 등에 의해 카페 게시글 내용 등이 외부



로 유출될 가능성 상존

❖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확보하면 언제든지 카페에 로그인하여 모든 카페 내 정보 취득 가능

- 부적절한 표현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카페 회원 법관들의 피해는 물론 사법부 전체의 이미지에 큰 손상 발생 우려 ⇨ 카페의 존재 사실 자체가 언론 등에 노출되기 전 선제적 신속 대응 필요

■ 사법부 현안 등에 관한 잘못된 정보 확산 억지

- 사법부 관련 민감한 이슈에 관하여 지극히 주관적이고 논리 박약한 의견 난무 ⇨ 300여명의 회원 법관들이 상시 접근할 수 있어 오도된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으로 법관들 사이에 공감대 형성될 위험성 존재
- 특히 상고법원 설치 관련하여 카페 내 게시글과 같은 부정적 의견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법관 사회에서조차 반대하는 정책이라는 뼈아픈 비판에 직면 ⇨ 관련 법안 심사에 매우 부정적 영향 미치는 결정타가 될 수 있음

나. 구체적 대처 방안

■ [자발적 조치] 카페 폐쇄 등 유도

- ① 최근 법관의 인터넷 표현행위에 대한 사회의 우려 분위기 간접적으로 전달
- ❖ 일선 법원장들을 통해 전국 법원에 이○○ 부장판사 사태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권고하면서, 간접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부적절한 의사표현 활동에 대한 자제 필요성 강조
- ❖ 이미 카페 내 댓글을 통해서도 회원인 일부 법관들이 카페 활동에 대하여 걱정하는 분위기 감지

☑ '외부유출시 문제의 소지가 큰 게시글에 대한 운영진의 관리기준을 요청'



합니다' (2015. 1. 31.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 유출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운영진에서 일응의 기준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편집해서 오용당하면 큰 사태가 날 수도 있는 위험이 다분하지 않을까요”

[일부 댓글]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많아 해킹이 아니라도 유출의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판사의 양심은 믿지만 아이디 도용과 해킹의 사례도 많은 것은 유념해야 할 듯 합니다”

“언론에 유출되면 즉시 폐쇄가 좋을 듯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전체 의견을 조회해 보고, 나름의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2] 회원으로 가장하여 카페 내 활동 중단에 대한 글 게시

- 현재 로그인 가능한 아이디, 비밀번호 확보한 상태
- 이○○ 부장판사 사태 등을 강조하며 직접 카페 활동 자제 관련 게시글을 올려 카페 폐쇄 분위기 확산

● [3] 운영자의 자진 카페 폐쇄 유도

- 소속 법원장이나 민을 만난 선배 여성 법관 등을 통해 홍○○ 판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우려 의사 전달
- 홍 판사를 운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원론적 의견 피력 방식이 바람직
- 다만, 홍 판사의 평소 성향상 카페 폐쇄 조치 등을 쉽게 수긍할 가능성 높지 않음 ⇨ 오히려 반발심 유발로 상황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유연한 접근 필요
- 1차적으로 최근 법관의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각과 카페 활동에 대한 소문 등을 언급하면서 반응 체크
- 카페 활동의 역효과 등 고민의 흔적 엿보이는 경우, 부적절한 의사 표현 활



동이라는 의사 던지시 전달

- 표현의 자유 등 운운하며 강경하게 발언할 경우, 일단 더 이상의 설득 중지

▣ [강제적 조치]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에 따른 조치

● 근거 규정 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관윤리강령

제2조(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공정성 및 청렴성)

-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3호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

법관은 의견을 표명할 때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삼가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비판은 보편타당한 법 논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관이 이미 확정된 사건에 관한 비평이나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금지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관이라는 직책의 특별한 무게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관하여 법관이 법정 밖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제5호 [법관이 단체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

첫째, 법관은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체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법관의 단체 활동의 자유보다는 말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법관으로서의 의무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관은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또는 청렴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아가 법관은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외관이나 상황을 만들어서도 아니 됩니다.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중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 또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셋째, 법관은 단체의 구성이나 운영이 외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아니하거나, 단체에서 구성원들



간의 내부적 친밀 관계로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을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활동은 자칫 법관의 품위와 관련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일반 국민으로부터도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법관은 재판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제공받는 등 재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단체에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첫째, 법관은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함으로써 SNS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관은 자신의 SNS 상에서 신상정보와 게시물의 공개범위 설정 및 타인이 자신의 SNS 상에 남긴 게시물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법관은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법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편견이나 차별을 드러내거나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법관은 SNS 상에서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할 때에는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외관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의 교류를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넷째, SNS의 공개적 성격으로 인하여, 법관은 SNS 상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제한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조인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다섯째, 법관은 SNS 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위반 여부

- 법관윤리강령 제2조의 품위유지의무, 제3조 제1항의 공정성 의심받을 행위 금지의무 위반 검토 가능 ⇨ 포괄적 성격의 위 규정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에 의해 구체화됨**

■ [권고의견 제3호 위반 여부]

- 의사표명의 ‘공개성’ 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위반 여부 단정하기 어려움**



⇒ ∴ 카페는 개설 당시부터 엄격한 법관 회원제를 바탕으로 외부에 대한 비공지를 전제로 의사표현 활동을 개진하고 있음

■ [권고의견 제5호 위반 여부]

- 우리법연구회를 타겟으로 마련된 권고의견
- 인터넷 카페 활동을 사이버공간에서의 단체 활동으로 해석하여 의율 가능
- 다만, 의사표현 활동만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 카페 구성을 부적절한 단체 활동으로 볼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론 제기될 수 있음

■ [권고의견 제7호 위반 여부]

- 커뮤니티 성격을 갖는 인터넷 카페를 불특정 정보 전파성을 특징으로 하는 SNS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의사소통의 즉각성, 회원의 내부 규율 위반에 따른 정보 전파 가능성 등을 이유로 권고의견 제7호의 유추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가능한 조치

- 설령, 법관윤리강령 등의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징계에 회부할만한 사항은 아님 ⇒ 자칫 공식 징계절차로 나아갈 경우, 법관 사회의 반발 야기될 수 있음
- 자발적인 카페 폐쇄 조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5호, 제7호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최후의 설득 및 엄포용 카드로 활용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2016. 8.

기획조생실

1. 검토 배경

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수준 심각

▣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조사결과

- 2015. 7. 발표된 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 ‘사법부를 믿는다’는 답변을 한 국민 27% (42개국 중 39위)
- 기타 신뢰도 조사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매우 낮음

▣ 정○○ 사태 등 최근 전 현직 부장판사 관련 사건 발생

- 정○○ 사태로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법관의 부적절한 처신 문제됨
- 그 밖에도 법관의 막말, 비행 사건이 꾸준히 발생함

▣ 김검사 자살사건에서 드러난 법조계 조직문화 문제의 심각성

- 최근 검찰에서 검사 자살사건으로 후진적 조직문화 문제됨
- 법원은 검찰과 상황이 다르지만, 국민들은 법원·검찰을 구별 못함
- 한편, 법원에서도 여전히 ‘병커 부장’ 등의 문제가 존재함

나. 법원장에 의한 사법행정권한 행사의 허점

▣ 구조적 한계

-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 + 해당 법원의 사정을 잘 모름
 - 신규 법원장 : 대부분 직전까지 재판업무만 담당하던 법관
 - ↳ 인적·물적 관리에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법원장의 업무 수행 어려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근무 ⇨ 비수도권 지방법원장으로 보임
 - ☞ 지방법원 사정 및 해당 지역의 사정 잘 모름
- 법관들의 잦은 전보인사 및 재판부 변경 ⇨ 평판 및 성향 파악 곤란
- 대규모 지방법원 ☞ 법원장의 행정력 범위 유월
- 법관수가 100명을 넘는 대규모 지방법원 다수 있음
 - ☞ 법원장이 당해 법원 법관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문화적 원인

● 온정주의

- 법원장이 해당 법원 소속 법관의 문제에 관하여 ‘그럴 수 있다’, ‘큰 문제 아니다’는 식의 온정적 접근을 하는 경우 많음

● ‘법관의 독립’으로의 회피

- 법원장이 해당 법원 소속 법관의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에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음

● “자기 법원의 법관이 문제 있음 ⇨ 문제 있는 법원장”으로 비칠 염려

- 법원장이 자기 법원 소속 법관의 문제를 드러내어 해결하려 할 경우 결국 자신이 법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여 쉬쉬함

다. 각급 법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방안 검토 필요

■ 법관의 비리/비행이 추가로 문제시되면 회복하기 힘든 상황 발생 가능

■ 검찰과 법원을 함께 묶어 사법개혁하자는 논의 촉발 우려

● 20대 국회 초기에는 검찰 개혁 위주로 논의됨

- ⇨ 검찰과 법원을 묶어 사법개혁으로 확대될 우려 있음

■ 타율적 개혁 논의 이전에 사법부 내부의 자율적 개선 노력 필요



2. 점검 대상

가. 총체적 점검의 필요성

▣ 법관 관련 부분을 주로 점검할 필요성

- 법관의 사회적 지위, 상징성

☞ 법관의 사소한 비행도 언론의 먹잇감, 국민적 비난 초래

▣ 법관의 업무영역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점검 필요

▣ 각급 법원의 상황도 전반적으로 점검 필요

나. 구체적 점검 대상

1) 법관의 사건처리 관련 점검 사항

▣ 법관의 근무태만 여부

- 양적 통계지표상 이상 징후 유무 ☞ 처리건수 급감 등
- 질적 통계지표상 이상 징후 유무 ☞ 미제분포지수 급격 악화
- 상습적인 입장 지연 여부

▣ 법관의 과도한/비정상적인 사건처리 관련 점검 사항

- 과도하게 많은 처리건수도 점검 대상일 수 있음
 - 합의부인 경우 배석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담시킬 수 있음
 - 심리부실의 우려 있을 수 있음
- 조정화해율이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경우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 있음
 - 수소법원 조정시 조정 강권은 없었는지 등

▣ 연고관계로 인한 부적절한 양형이 있는지 여부

2) 법관의 언행 관련 점검 사항



▣ 법정 내 막말 여부

▣ 법관의 부적절/비윤리적 법원 조직 내 행동

- 합의부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에게 비인격적인 언사를 하는지 여부
- 재판장이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부적절한 대우를 하는지 여부
-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지 여부

▣ 법관의 부적절/비윤리적 외부 행동

- 변호사나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사적 만남 여부
- 명정상태에서 실언, 비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법원의 운영 관련 점검 사항

▣ 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한 행사의 적정 여부

- 법원장이 사법행정의 각종 현안에 관하여 권한 행사를 방기하는지 여부
- 법원장이 사법행정권 행사의 명목으로 과도한 재판개입을 하는지 여부
(최근 전주지방법원 사례)
- 법원장이 독단에 근거하여 사법부 전체의 방향과 다르게 사법행정권한을 행사하는지 여부

▣ 특정 법원의 전반적인 근무기강 해이 여부

3. 점검 범위 및 주기

가. 점검 범위 (대상 법원)

▣ 방 안

- 1안 : 지방법원 본원급 이상 법원
- 2안 : 국설치 지원급 이상 법원



- 3안 : 모든 법원

▣ 검토 : 1안 (추후 범위 확대)

- 위험부담이 있는 제도임 ⇨ 초기에는 범위를 줄여 위험 최소화할 필요

나. 점검 주기

▣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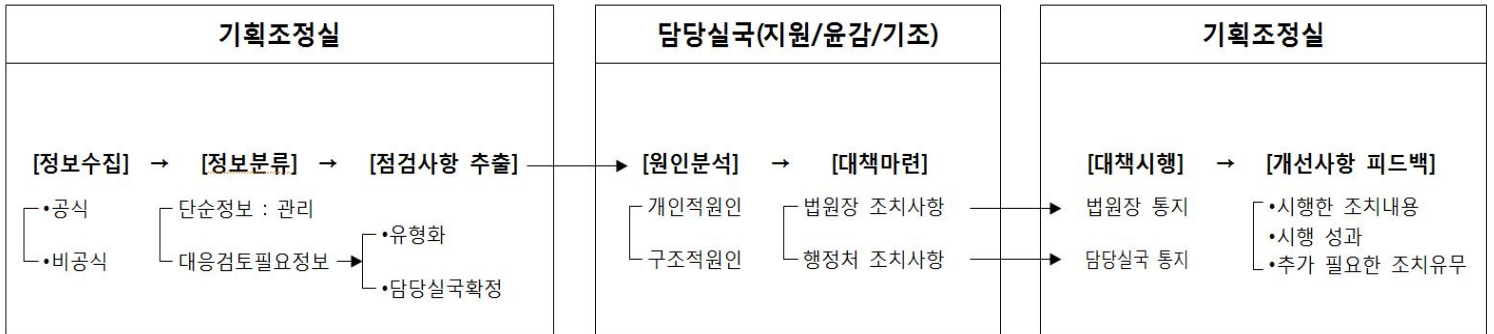
- 1안 : 분기별 점검
- 2안 : 매월 점검

▣ 검토 : 1안

- 잦은 점검 ⇨ 점검이 갖는 효과 저감 / 과도한 행정력 소요
 - 현재 매월 기획법관이 월간주요상황보고를 하고 있음
 - 매월 점검시 잦은 점검으로 인한 매너리즘 발생 ⇨ 효과 저감
 - 매월 점검시 점검, 조치 등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될 우려
- 분기별 점검으로 하되, 정기인사 직후는 생략함이 상당함
 - 정기인사 직후에는 각급 법원 법원장의 대법원장 업무보고 있음
 - ⇨ 대법원장님께서 그 기회에 해당 법원의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지시 및 당부 가능
- 7월, 10월, 1월 점검함이 상당함
 - 6/30, 9/30, 12/31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7월, 10월, 1월 점검 실시



4. 점검 및 조치 시스템 구축



가. 착안 사항

▣ 정보 수집에서 개선사항 피드백까지 시스템화

- “정보 수집 ⇨ 점검사항 추출 ⇨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 법원장에 게 통지 등 대책 시행 ⇨ 개선사항 피드백”의 단계별 시스템화
- 담당자 교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작동 방법 모색

▣ 공식/비공식의 정보 수집 + 공식적 점검의 외관

- 공식/비공식 방법을 망라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 필요
 - 공식적 정보수집이 주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함
 - 가용한 비공식적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함
- 「공식적」 점검의 외관 필요
 - 비공식적 정보수집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 필요**
 - 대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점검이 진행된다는 외관 필요함

나. 정보 수집



1) 공식 라인을 통한 정보 수집

▣ 법원장으로부터 분기별 '각급 법원 특이사항' 서면보고 수령

- 직전 6개월 통계에 근거한 특이사항 점검, 원인 분석
- 이례적 통계의 재판부에 관한 원인 분석
- 법원내 사건·사고에 관한 동향 보고 등

▣ 기획법관을 통한 정기적/비정기적 보고 수령

- 기획조정심의관과 각 법원 기획법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특이동향 수집

▣ 고충처리법관 제도를 통한 고충 보고 수령

- 현재 3개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에서 고충처리법관 제도 시범 실시 중임
- 고충처리법관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각종 문제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파악되고 조치될 수 있음

▣ 소통의 창을 통한 정보 수집

- 소통의 창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명/익명의 건의사항 등이 접수됨
- 소통의 창을 통해 ○○○○지방법원의 강○○ 부장판사의 속기사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이 보고된 전례 있음(강 부장판사는 사건화되기 전에 퇴직)

2)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

▣ 거점법관을 통한 정보 수집

- 신뢰할 수 있는 거점법관(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을 통한 해당 법원의 동향 주기적 파악

▣ 특이통계 추출 전산 시스템 개발을 통한 조기 경보체계 구축



● **표준업무량 통계**의 발전 및 활용

- 올해 **민사재판 통계시스템**을 개선하여 표준업무량 통계가 도입됨
 ↳ 법관의 업무량 측정에 관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표** 생김
- 행정사건, 형사사건에도 표준업무량 통계가 도입될 예정임
- 이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만든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량이 현저히 적은 법관을 시스템상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사건통계, 기일지정 현황, 로그기록** 등의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술 활용**으로 분석할 경우 근무태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법관을 자동적으로 추출할 수 있을 것임

▣ **SNS, 게시판 리서치**를 통한 정보 수집

- 법관들 대상으로 한 **익명게시판(이판사판)** 점검
- 여성법관들이 가입한 ‘**유스티티아**’의 동향 주기적 점검
-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법관 관련 공개된 SNS(가령 **facebook**) 점검
 - 당사자 본인의 SNS 점검
 - 부장판사인 경우 그 **배석판사나 참여관, 실무관의 SNS** 점검

▣ **변호사회, 공판검사**를 통한 정보 수집

- 당해 법관의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공판검사의 평가가 가장 객관적임
 - 각 지역 **변호사회 법관평가자료** 참고 ↳ 문제 가능 법관 리스트 작성
 - 각 지역 변호사들을 통해 주기적으로 특이사항 있는 법관 확인
 - 친분 관계 있는 공판검사들을 통해 정보 수집

▣ **일반직**을 통한 정보 수집

- 일반직 라인을 통해 기피 대상 법관에 관한 정보 간접적으로 수집



다. 점검사항 추출

▣ 수집된 정보의 분석 ⇨ 단순 정보 / 대응 검토 필요한 정보 구분

- 단순 정보 ⇨ 데이터로만 관리, 별도 조치 없음
- 대응 검토 필요한 정보
 - 양성평등 저해, 막말 등 기사화되었을 때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정보
 -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는 정보
 - 기타 적시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정보

▣ 대응 검토 필요한 정보의 유형화 ⇨ 담당 실국 확정

- 재판 관련 사항(업무 태만, 이상 통계 등) ⇨ 사법지원실
- 부적절한 법정 언행, 양성평등 저해 행위 기타 공직기강 관련 사항
⇨ 윤리감사관실
- 법원 운영 관련 사항 기타 구조적 문제 ⇨ 기획조정실

라.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1) 원인 분석

▣ 구조적 원인

- 법원의 인원 부족
- 사무분담 배정의 불합리
- 과도한 법원 행사

▣ 개인적 원인

- 건강, 가정사 등 신변 문제
- 법관 사이 / 법관과 직원 사이의 갈등



- 근무의욕 상실

2) 대책 마련

▣ 법원장 조치 사항

- 사무분담 수정
- 관련 법관/직원 면담, 독려, 비공식적 경고 등
- 법관의 방 배치 변경
- 직원 인사 때 직원의 희망 고려하여 타 과로 진출 등

▣ 법원행정처 조치 사항

- 법관 충원 여부 검토
- 피해 법관/직원이 있는 경우 상담 등 조치
- 비행 정도가 심한 경우 징계 여부 검토
- 타 법원에 유사 사례 있는지 확인

마. 대책 시행

▣ 법원장에게 통지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장님 또는 차장님께서 법원장에게 통지

▣ 담당 실국에 통지

바. 개선사항 피드백

▣ 해당 법원장 👉 차회 점검시 개선사항을 보고하여 피드백하도록 함

- 시행한 조치의 내용, 시행 성과 추가로 필요한 조치 유무 등 포함

5. 기대 효과

가. 긍정적 기대효과



■ **이완된 법원 분위기 쇄신**

- 법관의 직무수행 및 사생활 관리에 있어 건전한 긴장감 조성

■ **문제 소지의 조기 발견을 통한 확대 방지**

- 문제 발생전 예방 차원의 점검
- 문제 발생시 조기 발견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적절히 대응

■ **사법개혁이 문제될 때 자정노력을 한다는 방어논리로 활용**

■ **법원장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자료로 활용** ⇨ **법원장 근무의욕 고취**

- 2차 법원장 적격 검증시 책임자 보임의 기초자료로 활용

나. **부정적 효과 및 대응**

■ **일선 법관들 감정 : 극소수 문제 법관으로 인해 전체 판사를 감시**

- 현재의 ‘사법신뢰도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임을 강조

■ **‘법원행정처 = 빅브라더’ 인식 형성 우려**

- 외부에 의한 감시와 질타는 이보다 더 심하다는 점 강조

■ **보안유지 한계** ⇨ **비공식적 정보수집 사실 유출시 후폭풍 우려**

- 극소수의 인원을 통해 철저한 보안유지 하에 비공식적 정보 수집 필요

■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법원장에게 조치 요구 어려움**

- 소통의 창 등 익명의 제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법원장에게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설명 가능

■ **법원장들에 대한 불신 시그널** ⇨ **오히려 위축 또는 반감 우려**

-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원장 상을 정립**할 필요 있어 불가피함

- 과거, 고위 법관의 퇴임 전 **명예직으로서의 법원장**

⇨ **건전한 조직문화의 법원을 만들기 위한 행정가형 법원장**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1. 검토 배경

- 최근 이 모 부장판사의 인터넷 익명 댓글이 공개되어 파장
- 유사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검토 필요
 - 현직 법관들로만 구성되고, 모든 글을 익명으로만 올리게 되어 있는 인터넷 카페(모임)가 활발히 활동 중임
 - 위 익명게시판의 내용이 유출, 공개될 경우 내용에 따라 이 모 부장판사 사건과 유사한 파장 예상됨
 - 수백 명의 법관이 활동 중이어서 이 모 부장판사 사건처럼 '특정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논리로 방어할 수 없고, 해당 글이 법관 조직 전체의 인식과 언행을 드러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치명적 위험성
- ①먼저 위 익명 인터넷 카페의 현황과 게시글의 전반적 성향을 살펴본 후, ②政務的인 관점에서 몇 가지 대응방안을 검토함

2. 카페 현황

- 명칭 : '이판사판야단법석'
 -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위치(<http://cafe.daum.net/leeprosapro>)
- 개설 일자 및 운영진
 - 2014. 10. 24. 개설
 - 개설자는 ○○지법 ○○○ 판사(35기, 남편은 32기 ○○○ 판사)로 알려져 있음
 - 현재 카페지기(최고 운영자) 역시 개설자인 ○○○ 판사로 알려져 있고, 추가로 7명의 판사가 운영자로 등록되어 있음



■ 가입자 수 및 활동 정도

● 2015. 2. 15. 기준 총 가입 법관 384명

- 실명과 코트넷 메일을 통해 현직 법관임을 확인한 후 정회원 자격 부여
- 기존 법관회원이 다른 법관을 회원으로 초대하는 기능을 통해 회원수 급증
- 개설 3개월만에 가입 법관이 300명을 넘고, 매주 가입 법관이 30명 이상 증가할 정도로 급증세에 있다가 2월 들어 1주당 10여 명 선으로 증가세 다소 둔화. 이 모 부장판사 사태 이후 가입자 증가 미미함

● 매주 250명 안팎의 법관이 위 사이트를 방문하고, 매주 300건 안팎의 게시글(댓글 포함, 댓글 제외한 본글은 매주 30건 정도)이 올라 올 정도로 활발히 활동 중

- 원세훈 판결, 상고법원, 대법관 제청 등 주요 사법부 이슈에는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림
- 인터넷 아이디는 물론 닉네임, IP주소 등도 전혀 표시되지 않는 완전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글 작성자를 알 수 없음은 물론 동일한 사람이 작성한 글인지 여부도 확인 불가능함

● 1일 방문수가 1000건 이상으로 집계될 정도로 1일 수차례 방문하는 적극 활동 법관이 상당수로 보임 (대부분의 글이 근무시간 중 작성)

■ 게시판 구성

- 정의의 플랫폼(사법부 관련 의견 개선) / 업무Q&A / 인사연수정보 / 책창고 / 세상 보기(사회 전반 의견 개선) / 도와주세요 / 잡수다 / 카페 운영 관련건의 게시판으로 구성됨
- 도서 소개하는 책창고 게시판 제외한 모든 게시판이 비교적 활성화

3. 게시글 분석

- 법원 내부의 내밀한 정서나 인식을 언급하는 내용이 많아 유출, 공개시 위험성 큼



☑ 실제 게시물

- 전관예우에 관한 30여개의 댓글 중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많은 판사가 법원에 근무 중’, ‘주변 부장님 심지어 단독 중에 있다’, ‘부장이 대놓고 봐줘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불가능한 결론이 나왔다’**는 취지의 댓글이 상당수 (전문은 별지 첨부)
- 원세훈 사건 1심 재판장의 고등부장 발령에 관한 50여개의 댓글 중 **‘이 ○○ 부장의 승진 사례가 다른 법관들의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위 법관들이 대법관 승진을 위해 여당, 야당의 눈치를 보며 미담사례로 소개될 판결을 일부러 만들어 내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
- 신○○ 대법관님 퇴임 관련 기사에 대한 50여개의 댓글 중 **‘개전의 정이 없다’, ‘퇴임 후 대통령에 의해 정무직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댓글
- 최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제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는 글
- 합의과정에서 부장과 견해가 다른 경우 대응방법에 관한 20여개의 댓글

■ **사회 및 사법부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드러내는 내용도 매우 많음**

- 소장 판사가 대부분이어서 사법부 정책이나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도** 상당수 있으나, 표현과 수위는 대체로 정제되어 있음

■ **다만, 현재까지 저급한 ‘표현’이나 인신공격성 내용은 눈에 띄지 않고, 나름 건전한 수준의 표현과 자정력을 유지하고 있음**

■ **게시글 유출 가능성 관련 카페 내부 논의**

- **지난 달 카페 회원인 법관이 전관예우 관련 글을 언급하면서 ‘외부 유출시 문제소지가 큰 게시물에 대해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
 - 토론이 이루어졌으나, **다수 회원이 ‘동료법관을 믿자, 문제되면 그 때 폐쇄하자’**는 정도의 입장을 보임
 - **운영자도 ‘동료법관의 글의 내용까지 관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공지함
- 최근 이 모 부장판사 댓글 공개 사건 이후



- 위 카페의 익명 댓글도 위험한 것 아니냐는 염려의 글이 몇 개 달렸고, 유출경위 등에 관하여 가입자의 관심이 크나, 추가 논의는 없는 상황임

4. 대응방안 검토

▣ 기본 고려사항

- 위 카페의 존재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함
 - 언론에서 취재에 나설 경우 게시글이 유출될 가능성 큼
- 가입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가입 법관에 의한 유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외부 유출에 대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내가 알릴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심지어 좀 알려지면 어때라는 생각이다. 자체정화로 안되는 문제가 공론화되어 이참에 사법부 독립 및 신뢰회복이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으나’ 는 위험한 태도를 드러낸 글도 있었음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출되서 문제되면 그 때 카페를 폐쇄하자’ 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가입자가 상당수 있음
 - 퇴직하는 법관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공지되어 있으나, 퇴직하면서 관련 글을 출력하거나 저장하여둘 가능성도 있음
- 이 모 부장판사 사건으로 카페 가입 법관들이 게시글 유출에 대한 우려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활용할 필요 있음
 - 현재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적기에 마련되어야 함
- 특정 카페의 활동에 대한 개입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억압으로 비춰질 우려가 큼
 - 반발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우선시되어야 함

▣ 참고사항 : 국내외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

- Senior Presiding Judge for England and Wales(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관할하는 항소법원장 격)가 2012년 제정한 법관을 위한 인터넷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규정

- ‘익명으로 블로그 등 인터넷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신상정보가 밝혀지지 않는다고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이유를 들어 ‘법관은 인터넷에 글을 게시함에 있어 자신이 법관임을 밝혀서는 아니되고, 법관임이 밝혀질 경우 법관의 공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의사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인터넷 사용 가이드라인이 익명 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함
- 위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 규정에 반하는 기존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
- 위 규정은 영국에서 일부 법관과 언론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함
- 위 규정을 포함하여 외국의 유사 사례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 및 연구 필요함 (국내에서는 공직자 또는 법관의 인터넷 익명 활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1. 11. 29.자 권고의견

-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도 요구되므로, SNS 사용시 신상정보와 게시물 공개범위 설정 및 게시물 관리 등에 신중하여야 한다.
-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견표명시 자기절제와 품위유지에 유의하고,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 미칠 우려가 있는 외관을 회피하여야 한다
- SNS사용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공감하였으나, 아직 미제정

● 공직자 SNS 사용원칙과 요령

-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 7.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
- 공론화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 기밀을 유지할 것, 정책 및 업무와의 일치성을 고려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대응방안①] 선배 법관이 운영진에게 권유하는 방안 ⇨ 효과 미약

- [개요] 공식 사법행정라인이 아닌 카페 운영진 소속법원의 선배, 동



료 법관 등이 게시글 유출가능성과 위험성을 경고하고, 신중한 운영, 위험성 있는 글의 삭제 또는 실명화 등을 권유하는 방안

- 장점 : 사법행정권자가 직접 개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반발**이나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운영진 입장 변화시 **일거에 문제 해결** 가능

- **한계 및 위험성**

- 운영자가 이미 지난 달 ‘외부 유출에 대비하자’ 는 내부 제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운영진의 성향상 **입장 변화 가능성 희박**
- 그간의 글에 나타난 운영진의 성향상 사법행정권자가 아닌 단순한 선배 법관의 권유 내지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반발할 가능성 있고, ‘가입 법관 다수의 제안 내지 동의’ 라는 명분이 없는 한 운영진 주도로 종전 운영방식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대응방안②]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 **실현 가능성 미미**

- **[개요]** 소장 판사가 운영 및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위 카페에 **신중함을 갖춘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하여 게시글 유출가능성 및 위험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내부 변화 시도**

- 장점 : 내부 구성원 설득을 통해 **자연스러운 변화** 가능함

- **한계 및 위험성**

- 실제 카페에 가입해 문제제기를 하는 역할을 맡을 선배 법관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소요됨
- 위 카페가 선배 법관에 의해 주도된다고 느낄 경우 운영진이 **소장 판사를 위한 또 다른 익명 카페를 새로 개설할 가능성**도 있음

▣ **[대응방안③] 법관 전체에 익명글 작성 관련 주의 공지를 하는 방안**

⇒ **추가 검토 필요**



- **[개요]** 법원장이나 수석부장 등이 위 카페를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 채 최근 이 모 부장판사 사태와 관련하여 법관은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더라도 극히 신중하여야 한다거나 근무시간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함을 공지함으로써 현재 카페 가입자들로 하여금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함
 - 카페를 언급할 경우 오히려 법관 사회의 관심을 불러 가입자가 급증하거나 외부에서 카페의 존재를 인지하여 취재를 시도할 위험 있음
- **장점**
 - 이 모 부장판사 사태로 인해 카페 가입 법관 스스로 느끼고 있는 염려를 활용할 수 있음
 -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특정 카페의 활동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아니한 채 카페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위 익명 카페 뿐만 아니라 다른 포털사이트에 운영 중인 여성법관 카페 등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도 신중함이 더해질 수 있음
- **한계 및 위험성**
 - 익명 활동의 자제 및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의 메일만으로 위 카페의 활동이 현저히 신중해지거나 위축되지는 않을 수 있어 효과 크지 않을 가능성
 - 신중해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종래의 활동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어서 일시적인 억제책에 불과함
 - 카페를 언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익명 카페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다소 민감한 사안이어서 각급 법원 공지메일의 ‘위당’에 따라 예상치 못한 반발 가능성도 있음
- ▣ **[대응방안④]**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 장기 과제로 계속 검토
- **[개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SNS 사용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



인 제정 필요성 공감하고도 아직 제정하지 못한 가이드라인을 익명 활동을 포함하여 제정

- 장점 : 충분한 검토 후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명확한 해결책 제시
- 한계 및 위험성
 - 위 카페 게시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방안은 될 수 없고,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의 도화선이 될 우려가 있음

▣ **종합검토 : 3안을 중심으로 정무적인 측면까지 다각도로 고려하여 대응방안 추가 검토 필요**

- 2. 14. 이 모 부장판사 사표 수리 후 법관 조직의 여론 동향, 언론의 논조 및 위 카페의 변화 추이를 계속 관찰
- 위 특정 익명 카페에 대한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법관의 인터넷상 익명 및 실명 활동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대응전략의 일환으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외국에서 공직자 또는 법관의 인터넷 익명 활동에 대한 규제 내지 가이드라인에 관한 심도 있는 추가 연구조사 필요.
- 장기과제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검토 필요. 끝.



전관예우 (세상보기 게시판) 조회수 559 작성일시 2015. 1. 29. 09:57

요즘 저한테 쫓힌 단어입니다.

인사철을 앞두고 개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가 작년에 개업하여 얼마 벌었다는 소문도 들리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전관예우가 뭐 얼마나 있겠어. 있어봤자 결론을 바꾸겠어? 세간의 오해 아니겠어? 라는 정도로만 치부했는데요.

항상 제가 빠지는 함정이지요, 남들도 나와 같을 것이라는..... 이해관계에 대한 상상력 부족에서 오는.

위 생각들은 여전히 유효하긴 합니다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절차상의 편의바주기 또한 공정한 재판에는 맞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느끼는 것은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많은 판사님들이 법원에 계시기 때문에 저 문제가 내부적으로도 예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래의 수혜자들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의 단초는, 법원을 나가신 분들이 돈을 왜 그렇게 많이 벌까? 왜 형사사건에 쓸릴까? 였던 거 같습니다. 그것도 개업하고 1, 2년 안에 특히나...

전관은 왜 돈을 많이 벌까요?

물론 전관의 메리트를 그야말로 전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로서 발휘한다면 상관 없겠지만요.

익명이라고 하니 이런 글도 올려봅니다.

댓글 30개

15.01.29. 10:22 저도 요즘 이 생각 많이 했는데. 뉘신지 모르으나 찌찌뽕입니다.ㅎㅎ 법원이 전관예우의 문제를 직시하고 직면하지 않는 이상 신뢰는 공염불이라 생각합니다.

15.01.29. 10:24 형사사건 피고인과 그 가족은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이고, 그래서 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판사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사실 비난하기 어려운 인지상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그러한 기대는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러한 기대에 기대어 사건을 수임하는 전관변호사들이겠지요.

↳ 15.01.30. 16:25 예전에 비슷한 문제의식의 글과 함께 많은 댓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원글 작성자가 어떠한 이유로 원글을 삭제하면서 댓글까지 다 없어진 것 같네요...ㅠㅠ



15.01.29. 10:38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많은 판사님들이 법원에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 법원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실제 느끼시는 때가 많으신가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둔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외관상으로는 이런 것을 한번도 느낀 적이 없는데요.... 혹은 어떤 판사님이 전관변호사에게 다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판사님이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싶은데요..

↳ 15.01.29. 14:05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아래 댓글처럼 야박하게 굴 수 없다며 풀어주는 상황에서 나중에 자신이 나갔을 때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느껴지던데요.

15.01.29. 10:30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있음을 외관상 티내는 판사가 있을까요?^^

↳ 15.01.30. 17:42 재댓글분 저랑 배석 같이 하신 분인 것 같다는ㅋㅋ 좌배님이랑 저랑부장님께 엄청 저항했으나 일부는 막지 못했음을 반성합니다.TT

15.01.29. 10:38 첫번 째 댓글에 공감합니다. 한창 법원의 신뢰회복을 논의할 때, 저는 한번은 법원 정문에 “우리 법원에 전관예우는 없습니다.“라는 플라카드를 만들어서 걸면 어떨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입 밖에 내지 않아 우스꽝스러움은 면했어요.

↳ 15.02.02. 13:29 죄송합니다만, '플래카드'가 맞습니다.

15.01.29. 10:54 “그래도 000인데 면증 세워줘야 하지 않겠어요...조금만 (1십 형량) 낮출 수 없을까요?“ 어떤 형사항소부장님의 솔직하신 토로가 배석들 사이에서 회자된 적이 있었죠. 법원의 엄결성을 믿고 싶어했던 그 당시 순진한 저로서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 15.01.29. 15:30 저는 지방에 근무할때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지방이라 아직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및 서울을 거쳐서 이동했는데도 빈도는 물론 훨씬 적지만, 완전히 없지는 않더라고요(직접 경험만 한정된 건 아니구요, 어느 부장님이 그랬다더라 이렇게 간접으로 들은 경험까지 합해서요....) 처음에 받은 큰 충격이 슬슬 잊혀지고 무뎠지는 제 자신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15.01.29. 10:55 지방이라 그런지 동기 변호사들이 언제 형단하냐고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세일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 15.01.30. 17:55 그런 이해관계가 포함된 인간관계면 일찌감치 단절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너무 매정한가... 죄송

15.01.29. 11:12 윗윗 댓글과 같은경우 꽤나있는 것으로 전해듣고, 저도 충격 받았습니다.

15.01.29. 11:16 부정적인 예는 댓글에 많이 나왔으니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법원 내에서도 유능하다는 평판이 자자했던 전관변호사님을 민/형에서 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분의 사건 수입방식이나 지인인 판사들에 대한 영향력 여부는 모르겠으



나, 완벽한 논리체계를 갖춘 민사 준비서면(그 자체로 판결문같은 완결성), 치고 빠질 때를 아는 형사 의견서 내용과 공판준비태도, 재판부와 상대변호사 또는 검사를 향해 정중히 예의를 갖추면서도 사건의 핵심과약과 논리적 공방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시니까 사건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더군요. 전관예우라는 색안경이 이런 실력있는 전관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ㄴ 15.01.29. 11:21 아무래도 법원 출신 변호사가 재판 준비와 진행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굳이 특정비교는 삼가겠지만, 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ㄴ 15.01.29. 11:37 이길 사건을 골라서 말아서 승소율이 높을 수도 있어요 일단 사건이 몰릴테고 판사의 감으로 이길 만한 것만 골라 말한다는 거죠

ㄴ 15.01.29. 12:30 이길 사건을 골라서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선호”로 인한 부수적 효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소장과 준비서면을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변론도 깔끔하게 하고, 특히 증인신문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만의 느낌인가 모르겠습니다.

ㄴ 15.01.29. 15:31 반면 **놀라울 정도로 무례한 변호사님이 있어서 검색해봤는데 고위 법관 출신인 경우도 좀 있지 않나요? 전 사실 몇번 경험했는데...--;**

15.01.29. 11:42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돈이죠

15.01.29. 15:29 저는 전관예우란 없다고 믿고 있고, 저 스스로 전관예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사건 진행해 왔으며(다행히 배석일 때 부장님도 그런 분이 없었음),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제가 너무 순진한건가요? 물론 법원에 계셨던 분들이 주장을 잘 하시고 진행도 잘 하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ㄴ 15.01.29. 17:08 제가 전에 딱 그랬거든요. 나와 내 주위가 그러하니깐요.. 그런데 제가 무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그 존재자체에 무지했어요. 저를 탓하는 것이니 오해 마세요.

15.01.29. 15:48 전관변호사님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젊은 단독 판사가 쟈 무섭다고 이야기하고요. 예전에 한번 고등부장님 출신 변호사님이 '소정의변론'을 하고싶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몰랐던 우리부장님 안된다고 매몰차게 했다가, 나중에 그분이 누군지 알게된 후 '우리랑 같이 계셨던 분인데..'하시며 허용하시더라고요. 그게, 법원에 남은 사람에게게는 '평판'의 문제로 압박 내지 작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만요.

15.01.29. 15:52 반면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나요? 전관이고 재판장과 잘 아는 사이면서도 소정의 변론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들. 특히 법원 재직 중에도 전관예우나 소정의변론에 대해 비판적이셨던 분들인데. 가끔 그런 분들이 전화하지 않으면, 혹시 내가 잘못해서, 내 인간성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닌지.... 걱정 했는데, 원래 그분들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사직한 이후에도 법원



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싶네요.

15.01.29. 18:01 나와 내 주위(특히 배석판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그렇다고 믿었던 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부장님을 비롯해서 단독판사들도 몇번 경험했습니다. 부장님들이 대놓고 봐줘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전관변호사님들은 사건 하나 잘 만나면 억 단위로 돈을 벌지요. 우리의 얇은 상상은 초월하는 듯해요. 돈이 그렇게 걸려 있는데 소정의 변론이 두려울까요? 아예 안 될 사건을 들이미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 될만한 사건, 애매한 경계선 상의 사건이고, 그런 사건에서 전관임을 이용해서 무조건 된다고 선임하고, 또 실제로 되게 만드는 거죠 뭐.

15.01.30. 02:15 제 주위 얘기를 듣건대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원인 중 상당 부분은 소위 말하는 사무장들, 사건브로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전관예우나 판사와의 관계를 들먹여 사건수임료를 올리고 자기가 먹을 파이의 크기를 뺏겨갑니다. 실제 전관예우라 하는 것은 옆회사 출신은 엄청 많고, 우리회사도 가끔 들려오는 얘기로는 - 거의 **불가능한 결론이 나왔다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대부분은 아닐거라 생각하는데, 부인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있는가봅니다

↳ 15.02.03. 09:24 맞습니다. 다만 전관들도 최소한 알면서 묵인하거나 한마디씩 거드시겠지요.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공정하고 떠들어도 한번 그 시장을 겪어본 사람(국민)들이 법원이나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는 기여하는 것 같아요.

15.01.30. 09:36 저도 꽤나 순진했나 봅니다. 씩씩하네요. 그래도 순진한 사람들은 모를 정도고 위에서 나온 얘기 정도라면 법관의 권한에 비추어 볼 때 놀라울 정도로 청렴한 것 아닌가 하고 위안해 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깨끗한 조직이 아닐까요...

15.01.30. 14:59 주변에 다른 사람이 전관을 예우하더라-보다, 적어도 나는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게 재판을 하자-는 의지가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 대법관님께서 대법관 되시기 전에 사석에서, 판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인간관계 단절을 감수하셨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판사의 길과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사람의 길을 따로 있고, 판사의 길을 선택한 이상 그 길만 걸어야 한다고 하셔서 깊이 감명을 받았더랬습니다.

↳ 15.01.30. 15:01 - 다만, 법원에서 '예우'를 하지 않음에도, 사람들의 기대로 인한 사건쏠림-유리한 사건 수임-좋은 결과, 브로커 또는 변호사의 거짓말(판사와 친해서, 전관이라서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선전하는 식), 또는 경험과 실력에 따라 전관변호사님들이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등의 현실과 그로 인한 국민의 '오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응이 필요하겠지만요.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2015. 8.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CJ와 VIP 면담으로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에 의미 있는 전환점 도래

- VIP가 8. 6. 대법관 임명제청을 위한 오찬 자리에서,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 표명과 향후 제도 개선 추진 방향 제시

☑ VIP 발언 요지

-상고심 기능 개편 필요하나, 상고법원안은 상고법관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 위헌 시비, 4심제 논란 등 문제점 있음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창조적 대안 창출해 주기 바람

- VIP의 평소 단호하고 직설적인 발언 스타일로 보아, 상고법원안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협상 파트너로 법무부 지목 ⇨ 지금까지 배후 반대세력의 구심적인 법무부와의 협상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 법무부가 VIP의 구체적 지시에 의형상으로라도 순응하는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

- 창조적 대안 마련을 위해 협상 테이블 갖추고 VIP에게 진행 경과 보고해야 할 의무 발생

■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 면밀히 분석 ⇨ 하반기 국회 입법 성사를 위한 **효과적 전략 수립**

- [법무부] VIP 지시 있었더라도, 곧바로 법무부의 진정성 있는 전향적 태도 기대 난망 ⇨ 이를 극복하기 위해, VIP 지시를 동력삼아 지속적·단계적으로 접촉하여, Big Deal 등을 통한 협상타결 추진



- 하반기 정기국회 임박한 상황에서, ①다단계·전방위 협상 가동을 통한 속도전 추진 + ② 신속·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다양한 협상 카드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 [국회] 최근 국회 상황 분석을 토대로 하반기 국회 입법추진전략 재점검

- 하반기 국회 주요 일정 및 정치 이벤트 파악 ⇨ 법률안 심사 일정에 미칠 영향 분석
- 특히, 법사위 1소위 통과 타개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 수립 ⇨ 법무부 설득과 병행 추진 등 최후의 골든타임 활용 극대화 방안 모색

2. VIP 면담 이후 법무부 현황 및 대응 전략

가. 현황

- ▣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 ⇨ **이중 플레이**

- 표면적 ⇨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 But 상고법원안에 대하여는 신중검토 의견

☞ 7. 20. 법사위 1소위에서의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차관 의견

“상고제도 개선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법조 직역에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 실질적 ⇨ 확고한 반대 입장
 - 법원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심리 발동 ⇨ 각종 계변적 반대 논리 구성·유포
 - 최근에는 의원 입법 방식으로 발의한 형식적인 부분을 트집잡고 있음
 - 기본적으로 타 기관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수수방관적 태도 견지
 - 다만, 대법관 증원론에 대하여는 진보 세력의 최고법원 진출을 우려하는 문제인식 가지고 있음



■ VIP 지시에 따른 태도 변화 예상

- 민정수석이 8. 10.경 법무부장관에게 VIP 지시사항 전달 ⇨ 법무부로서는 VIP 관심사항에 대해 더 이상 기존의 방관적 태도 고수 불가
- 대법원과의 협의진행 경과를 VIP에게 필요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부담
- 지시 후 [대외적·형식적 입장] ⇨ VIP 지시 이행 위해 노력
 - VIP가 창조적인 대안 마련을 지시한 이상 ①대법원과의 협의에 나설 수 밖에 없고, ②어떠한 형태로든 협상테이블에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외관을 형성할 것임
- 지시 후 [대내적·실질적 입장] ⇨ 여전한 지연 및 회방 전략
 - ①시간이 법무부의 편임을 잘 알고 있음 ⇨ 통치구조 및 국민의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임을 들어 19대 국회 임기만료시까지 지연전술
 - ②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후 BH·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핑계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협상과 양보의 자세 기대 난망
 - ③실제 협상테이블 마련을 위해 법무부가 먼저 연락할 가능성도 높지 않음

나. [대응 기본 방향] ⇨ **강온 양동 전략** 구사를 통한 **협상 지연 타파**

■ 법무부 지연 전략 극복 대책 필요

-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국면 이용하여 지연 전략 구사 가능성 높음 ⇨ 양 기관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지루한 지구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필히 극복하여야 함

■ [압박] VIP 지시사항임을 전면에 내세워 강도 높게 협상 압박

- VIP 지시에 따른 법무부의 책임감과 부담감 심분 활용
- CJ와 VIP 면담 이후 변화된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 명확히 인식시켜야 함 ⇨ ① **VIP 구체적 지시 내용 다시 전달하며 협상에 응할 것 주문**, ② **기존의 무조건적 반대 입장 고수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중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점을 명확히 경고**



▣ [회유] 상호 타협을 통한 윈-윈 구도 형성

- VIP의 창조적 대안 마련 지시가 법무부 입장에서도 기존 태도에서 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와 명분이 될 수 있는 상황
- 현재의 상고법원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 준비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절충과 양보 가능하다고 설득
- 법무부의 주요 현안 및 요구사항과의 Big Deal을 통한 상생의 길 제시

다. 구체적 협상 카드

1) 상고법원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 제시

▣ 가장 강한 수정안부터 가장 약한 수정안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대안 준비하여 제시

- 신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법무부 입장에서 가장 만족할 만한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협상 난항 시 추가적 대안 제시하는 방향으로 협의 진행

▣ 협상 가능성 관점에서 현재 검토 중인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 우선순위 부여를 위한 고려 사항 ⇨ ① 법무부 주요 관심 사항 및 문제 제기 영역, ② 사법부 수용 용이성
- 문제제기 유형에 따라 준비된 대안

분류	문제제기	법무부 관심	수용 용이성	우선 순위
I. 상고법원 인사 관련 사항				
1. 추천위원회	민주적 정당성 대법원장의 인사권 강화 관료화·계층화	상	중	3
2. 법조경력 상향	상고법원 신뢰 확보	중	상	6
3. 시니어 저지 도입	관료화, 전관예우 고위직 자리늘리기 사실심 충실화 역행	하	상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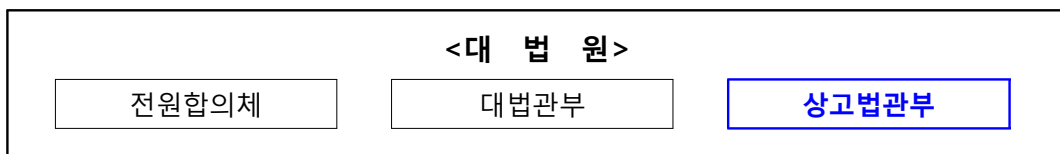


4. 대법관 수 감축	고위직 자리늘리기 전관예우	중	중	
5. 외부 법조경력자 임용	다양화·전문성 강화 관료화·계층화	중	상	5
Ⅱ. 대법원 사건 분류				
1. 필수적 심판 사건 확대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 심사기준 자의성, 예측 가능성	상	상	2
2. 사건 심사 기준 보완	중요 사건의 대법원 재 판 보장	상	상	
Ⅲ. 재판 절차				
1. 특별상고 폐지	4심제	상	중	4
2. 특별상고 인지 환급	4심제, 국민 부담	중	중	8
3. 지역 접근성 제고	서울과 지방 차별, 지부 설치	중	중	
Ⅳ. 조직 -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대법원 재판받고 싶은 법감정 별도 법원 설치 부담과 혼란	상	상	1
Ⅴ. 법률 규정상 도입 조치				
1. 한시법 규정	도입 컨센서스 미성숙	하	중	9
2. 결과 보고 의무 규정	설치 효과 불확실	하	중	

▣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매개로 협상 추진

● [첫 번째 제시 대안]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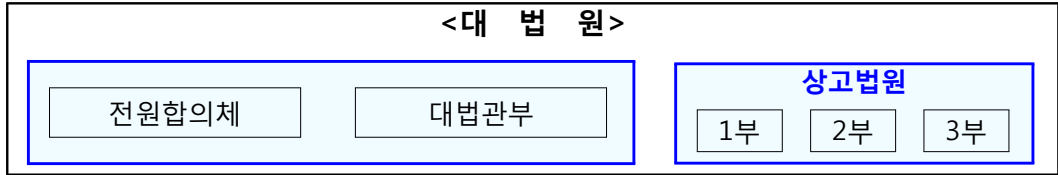
- 1안 ⇨ 대법원 내 별도 재판부로 설치





- 별도의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재판부로 구성

- 2안 ⇨ 대법원 내 독립된 재판조직으로서의 상고법원 설치



- 상고판사로만 이루어진 재판부를 묶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

- 독립된 법원 신설은 대응하는 검찰청 신설 문제로 직결되나, 대법원 내 재판조직으로 설계하면, 법무부 제2차관(송무차관)직 신설하여 법무부 조직과 기능 확대할 수 있는 여지 발생

- 법무부 제2차관(송무차관)직 신설하면, 그 산하에 국가송무국, 국제법무조약국 등 검사장급 보임 가능한 2개 이상의 국 설치

☑ 미국의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제도 참조

- ▶ 1870년 Judiciary Act에 의해 설치
- ▶ ①정부가 패소한 모든 사건 검토하고 상소 여부 결정, ②어떤 사건을 대법원이 심사할 것인지 의견제출, ③대법원의 모든 사건에서 미국연방을 대표
- ▶ 산하에 4명의 부차관(Deputy)과 20여명의 차관보(Assistant solicitor) 두고 있음
- ▶ 평판 높은 전문지식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받고 있음

- 상고검찰청 신설과 함께 추진 시, 최소 5명의 검사장 자리 중설 가능

- [기능①] 신설된 송무차관 조직에서 참고인 의견서 제출(Amicus curiae) 업무 적극 수행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에서 국가 의견 및 공익 대변

- [기능②] 상고법원안에 따른 대법원의 사건분류심사 절차에서, 공식적으로 사건분류 의견 개진

● [두 번째 제시 대안] 대법원 심판 사건 확대

- ①형식적 기준에 의한 형사사건 추가 ⇨ ①10년 이상 징역·금고형 선고 사건, ②1심 합의 형사사건 등



- ②실질적 내용에 따른 형사사건 추가 ⇨ ①주요 공직자 수뢰 등 사건, ② 국가 안전보장 관련 사건, ③ 시국·공안 사건 등
- ③기타 법무부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 가능
- ④대법관이 담당하는 사건 분류 절차에서 법무부가 참고인 의견서 제출 (Amicus curiae) 제도를 통해 대법원 심판사건으로 정해 달라는 의견 개진 시, 최대한 존중

● [세 번째 제시 대안]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준하는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

- 법무부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하는 민정수석의 가장 큰 문제제기 사항
- ①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VIP 의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설계하여 제시
 - 추천위원회 구성에 VIP 영향력 최대한 보장 ⇨ 1안부터 4안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카드 제시

	대법관추천(10명)	1안(9명)	2안(9명)	3안(10명)	4안(9명)
당연직	선임대법관				상고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
비당연직	법학교수회장	대통령 지명 3	대통령 지명 2	대통령 지명 2	대통령 지명 1
	법전문협회의이사장		법학교수회장	국회 추천 2	국회 추천 2
	법관 1		법전문협회의이사장		
	학식, 덕망 3	학식, 덕망 3	학식, 덕망 2	학식, 덕망 3	학식, 덕망 2
종합	행정 1, 사법 3 교수 2 재야 1, 일반 3	행정 4, 사법 1 재야 1, 일반 3	행정 3, 사법 1 교수 2 재야 1, 일반 2	행정 3, 사법 1 입법 2 재야 1, 일반 3	행정 2, 사법 2 입법 2 재야 1, 일반 2

- 추천위원회 심의기구화 + 추천위원회 추천 의결에 기속력 인정



- [2]다만, ①현행 헌법하에서 대법관 아닌 상고법원 판사에 대하여 [국회 동의와 VIP 임명] 과 같은 수준의 임명절차 마련은 불가능하고, ②상고법원 판사는 간단한 개인적 분쟁을 처리하는 3번째 심급 담당 법관일뿐, 실질적인 최고법원의 법관 아니라고 설득

2) 그 외 법무부가 관심 가질 만한 Big Deal 카드 제시

▣ 사법부 수용 가능한 방안

- [1]영장제도 관련 ⇨ 통제 강화 시, 압박 카드될 수도 있음

[1]체포·구속영장제도 개선 ⇨ '피의자 인권 보장에 기여하는 **신인신구속시스템 구축**'

- [체포]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및 체포 전치주의 도입
- [구속 심사] 체포 후 계속 신병확보 필요성 등 심사
- [구속 심사 후] 기소 전 보석제도와 함께 **영장항고제 도입**

[2]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 정비 및 증거능력 인정 확대 방안

- 최근 원세훈 판결 및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원합의체 판결로 검찰의 위기감 극대화
- 전자정보에 대한 **효율적 압수수색절차 마련** ⇨ 압수수색절차 보완과 함께 **연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전향적 검토 ⇨ 단 일정한 한계 있음
- 증거의 성립진정 인정에 관한 **특례 인정** ⇨ '反테러법'과 같은 공안사건에 **특별 적용**하는 입법에 대하여 협조 여지

- [2]법무부·검찰 조직 및 기능 확대 관련

[1]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검사 보임 ⇨ **형사공동조 등에 투입**

[2] 법무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교차 파견

[3]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

[4] 특성화법원 설치 방안 ⇨ 현재 이른바 '**중점 검찰청**' 기소 사건 중 관할 모호한 상당수의 사건 관할위반으로 이송함으로써 강력한 압박카드로도 활용 가능)

- [3]법무부·검찰이 추진하는 형사 정책 관련

[1] **형사사법통계시스템 도입**

- 법무부가 적극 추진 중인 4대 기관(법원, 검찰, 경찰, 해양경찰) 통합 형사사법시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협조

- 현재 소극적으로만 대응 중이나, 이미 검찰에 형사사법통계시스템 구축되어 있는 상황 고려하여, 일정 영역(예컨대, 확정된 선고내역 제공 등)에서 시스템 구축 성과 나타낼 수 있도록 입장 선회

[2] 보호수용제 도입

- 특정 흉악범죄에 국한하여 제도 도입 목인
- 어차피 야당, 학계 등의 반대로 입법 통과 쉽지 않을 것

■ 전략적으로 협조 외관 취할 수 있으나, 추가적 내부 검토 필요한 카드

[1] 플리바게닝 도입 방안 ⇨ 법원이 묵인해도 당분간 입법 통과 어려움

[2]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방안 ⇨ 법원의 구인영장 전제

[3]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 도입 방안

[4] 사법방해죄 신설 방안

라. 구체적 협상 추진 전략

1) [각론 전략 ①] BH 내부 중재자를 활용한 협상 진행 ⇨ VIP에게 협상 진행 상황 용이하게 보고할 수 있는 창구 확보

■ BH 내부 중재자 필요성

- [실질적 필요성] ⇨ ①중재자 없이는 지연 전술 극복 어려워 결론 도출 사실상 불가 ②입법 일정의 제약상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물 도출 필요, ③ BH 내부 중재자를 통해 법무부에 대한 압박 효과 기대

- [명분상 필요성] ⇨ 상고제도 개선의 국가적 중요성, VIP 지시의 무게감 및 결과도출 필요성,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첨예한 입장차를 고려할 때 중량급 중재자가 필요함

- ⇨ 양 기관을 중재·조율하여 합의안 도출을 유도하는 컨트롤타워 필요

■ 적합한 중재자 ⇨ **이명재 민정특보**

- 사실상 특보단장의 지위에 있고, VIP 신임 두터움 ⇨ 민정특보의 중재안에 대하여 VIP 수용가능성 상당함



- 존경받는 검찰 대선배이자 동향(경북 영주) 선배로서 민정수석에 대하여 영향력 행사 가능
- 국가원로로서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지위에 있고, 균형잡힌 시각과 책임감 있음 ⇨ 검찰중심적 사고 약하고, 합리적 설득 가능

☑ 이명재 특보 설득 가능성

- ▶ [인적 사항] 19○○년생, ○○고, 서울대 법학과, 연수원 1기, 검찰총장
 - ▶ [성향 등]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 전형적인 경청형 인물, 로펌 고문직 자진사임 등 헌신적 자세, 법조 현안 관련 민정수석과 역할 분담하고 있는 지위
 - ▶ [설득방향] 국가 원로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하도록
 - 상고허가제가 어려운 우리나라 환경에서, 상고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노력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 부각
- ⇨ 대법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 설득이 관건

2) [각론 전략 ②] 효과적인 협상 프레임 구축 + 이원적 협상 라인에 따른 단계별 협상 추진

■ 협상 Framing

● 격식화된 협상 진행

- [장소] 대법원과 법무부 청사 등 사무적 장소에서 홈앤어웨이 방식의 상호 교차 협상 추진
- [방식] 공식적인 회의 형식으로 진행, 오만찬과 겸하는 형태 지양

● 협상의 데드라인 설정

- 최종 시한 및 대략적인 협상 횟수를 사전에 결정하고, 데드라인까지 협상 마무리하기 위해 전력 투구
 - 예컨대, 8월 말 협상 개시하는 경우, 1달의 협상 시한으로 9월 말까지 협상 완료하고, 그 사이 1주에 1차례씩 4번 회의 개최
- 데드라인에 대한 인식으로 막판 양보의 타이밍 확보

■ 1단계 착수 ⇨ 실무협의



- [카운터파트너] 법원행정처 차장, 기조실장(정책실장) —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 [협의를방향]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된 법무부 반대 논리 외에 비공식 접촉과정에서의 추가 경청을 통해 법무부의 진정한 인식 및 needs 정확한 파악 ⇨ 인식공유 통해 협상 여지 확인하고 점점 모색
- [유의사항] ①1단계 협의부터 법무부가 진지한 협상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VIP 지시사항을 매개로 한 민정특보의 '성의있는 협상태도 촉구' 필요 ②법무부 반응에 따라 1단계 협의를 상당 부분 생략하고 신속히 2단계 협의에 집중할 필요 ⇨ 지루한 지구적 양상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 (협상 경과 상시 모니터링 긴요)

■ 2단계 ⇨ 대안제시를 통한 수뇌부간 본격 논의

- [카운터파트너] 법원행정처장 — 법무부장관 라인을 중심으로 함
- [협의를방향] 1단계 협의에서 파악된 ①문제제기 유형별로 대안을 취사선택하여 제시하고,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대안제시만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②법무부에 대한 압박·회유 카드를 활용한 빅딜을 통해 법무부 동의 유도

■ 3단계 ⇨ 최종결론 도출 및 입법 추진

- 법원이 최종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민정특보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형태 ⇨ 법무부 및 민정수석의 반발 완화 + VIP 설득 유리
- 최종안 마련시 ⇨ VIP 승인을 거쳐 법무부를 통한 정부입법안으로 신속히 국회 제출
- ①검찰 출신 국회의원 반대 무마는 법무부 담당 + ②여당 의원은 청와대 중재안에 따르도록 유도 + ③야당 등 나머지 의원 설득은 사법부 담당

3) [각론 전략 ③] 주요 언론 활용한 협상 압박 분위기 조성

■ 언론 활용 필요성



- 언론을 통해 상고제도 개선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입법 지연에 따른 법무부 책임론 부각
- 언론에 의해 형성된 여론이 BH에게 유입되어 VIP 관심 환기시키는 부차적 효과도 기대
- ⇨ 법무부를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기폭제 될 수 있음

▣ 구체적 추진 방안

- [언론매체 선별] 법무부에 실질적 영향 미치고, BH 인식 환기시킬 수 있는 메이저 언론사 활용 ⇨ 조선일보 1면 기사 등
- 언론기사의 전체적 방향
 - 상고법원 제도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상고법원 개요 소개하는 수준에서 탈피
 - 상고제도 개선을 VIP도 관심 기울이는 주요 국가 현안으로 부상시켜 강조
 - 이미 언론에 노출된 CJ와 VIP간 면담 경과 및 내용을 소개하는 방법도 검토 가능

☑ 뉴시스 8. 12.자 「양○○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오찬」 기사

「양○○ 대법원장이 지난 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이 지난 오찬에서 박 대통령에게 이 문제(상고법원)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기류 변화가 조금씩 감지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입법추진경과 및 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법무부의 반대로 인해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소개
- [언론 활용 방안] ①기고문이나 사설 게재 방식에 더하여, ②대국민 설문조사 실시하여 결과 공표, ③중량급 법조인 등 참여하는 지상 좌담회 개최 등 함께 검토
- [추진 시기]
 - 18월 중으로 기고문이나 사설 등 통해 변화된 입법추진환경(올해 내 상고



제도 개선 기정사실화, BH의 관심 표명 등) 소개 ⇨ 법무부를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데 활용

- [2]9월 중 대국민 설문조사, 지상 좌담회 추진 ⇨ 법무부와의 원활한 협상 진행 매개로 활용

3. 국회 현황 및 대응 전략

가. 현황

1) 8월 임시국회 현황

▣ 법사위 법률안 심사 가능성 희박

☑ 8월 임시국회 진행 경과 및 향후 일정

▶ 진행 경과

-[회기] 8. 7. ~ 8. 31.

-[본회의] 8. 11./8. 13.(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법사위 전체회의] 8. 11.(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

▶ 향후 일정

-[예결위 결산심사] 8. 18. ~ 8. 28.

-[본회의] 8. 28. 10:00

- 국정감사 및 내년 총선 준비 등으로 인해 법사위 1소위 개의 어려움을 것으로 예측

- 법사위원장, 법사위원 8명과 함께 예정되어 있던 8. 20.부터 8. 27.까지 북유럽 출국 일정 취소하고, 법률안 심사 전체회의, 1소위 개의 주장하였으나, 대부분 법사위원들 이에 대하여 미온적 반응

- 대다수 의원들은 벌써부터 지역구에 머물며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

▣ 8. 18.부터 개시될 예결위 결산심사 외에는 사실상 8월 임시국회 활동 없을 것으로 보임

- 여야, 국회 일정 합의과정에서 힘겨루기로 팽팽한 기싸움
- [새누리당] 야당의 국회 운영에 대한 비협조 비난



- [새정치민주연합] 더 이상 여당이 정국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는 강경 분위기

2) 하반기 국회 원활한 운영도 불투명

■ 야당의 여당에 대한 공세 분위기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야당 내에서는 상반기 정국에서 일방적으로 여당에게 끌려 다녔다는 문제인식 팽배
 - 5월부터 7월까지 3번의 여야 합의사항을 야당은 100% 이행하였으나, 여당은 아무것도 지킨 것이 없다는 인식
- '박기춘 정국' 마무리하면서, 대야 공세 강화할 수 있는 명분 확보
 -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협조에 여당이 화답해야 할 차례라고 압박
 - 구체적으로, ①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보장, ②국정원 해킹 관련 긴급현안질문 및 국정조사, ③성완중 리스트 특검, ④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국회 설치 등을 여당에 요청
- 이러한 요청 사항에 대한 여당의 화답이 없을 시,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
 - 그러나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수 있는 민감한 요청 사항들에 여당이 순순히 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문제의 난맥상 있음

■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변경

[국정감사] 당초 잠정안 9. 4. ~ 9. 23.에서 **9. 10. ~ 10. 8.로 변경** (1차: 9. 10. ~ 9. 23, 2차: 10. 1. ~ 10. 8.)

[예산안 심사] ①상임위 예비심사 10. 12., 10. 19.~10. 26., ②예결특위 종합심사 10. 28.부터 개시

[법률안 심사] 10. 28.부터 개시

- [변경 요인] 정기국회 일정 협의 지연 ⇨ 8. 20.에 이르러서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합의 도출
- [부정적 파장] 예산 및 법률안 심사 일정 동반 연기



- 10월 초까지 국정감사 진행 후, 10월 중순부터 예산안 심사 돌입
- 10월 말부터는 예산 심사와 법률안 심사 동시 진행 ⇨ But, 예산안 심사에 보다 집중 예상
- ⇨ 10월, 11월 상고법원 법률안 통과 로드맵에 대한 중대·심각한 변수 발생

■ 하반기 국회에서 충실한 법률안 심사 장담할 수 없는 상황

- 19대 총선 직전 연도인 2011년 국회 상황 답습할 것으로 만연히 기대할 수 없음

☑ 2011년 하반기 국회 법률안 심사 일정 개요

① 정기국회

- [회기] 9. 1. ~ 12. 9.
- [국정감사] 9. 19. ~ 10. 8.
- [예산심사] 11. 2. ~ 12. 5.
- [법사위 법률안 심사] 10. 24. ~ 11. 15. (1소위 및 전체회의 각 3차례 개의)

② 12월 임시국회

- [회기] 12. 10. ~ 12. 31.
- [예산심사] 12. 20. ~ 12. 31.
- [법사위 법률안 심사] 12. 28. ~ 12. 31. (1소위 1차례, 전체회의 4차례 개의)

- [우려 요인 ①] 12. 2.까지 마쳐야 하는 예산심사 일정
 -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의원들의 예산 활동은 치열할 것 ⇨ 12. 2.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기 위해, 10월 중 국정감사 종료 후 예산심사 개시하여 11월 내내 예산심사에 몰입할 가능성 높음
 - 12월 말까지 예산심사를 위해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 활동 이어가던 종전과 달리, 12월 임시국회 개의 동력 상실될 수 있음
- [우려 요인 ②] 내년 총선 후보경선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도입 가능성
 - 당원 외 지역구 주민들까지 경선 투표권 가지게 됨에 따라, 의원들이 지역구 분위기에 촉각 기울이며 지역구 행보에 상당한 역량 투입할 것으로 예상 ⇨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의정 활동의 최대 장애 요인될 수 있음



● [우려 요인 ③] 새정치민주연합의 分黨으로 인한 정국 소용돌이 가능성

- 국정감사 종료 후 새정치민주연합의 해체 및 야권 재편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 제기

- 친노, 비노간 계파 갈등 지속
-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세 하락 분위기 심각
- 최근 이종걸 원내대표의 심상치 않은 행보

☑ 원내대표 취임 100일(8. 14. 기준) 맞은 이종걸 원내대표 최근 활동에 대한 평가

- ▶ 원내대표직보다 '비주류 수장' 이미지 부각 ⇨ 당내 비주류 대변해 **문재인 대표와 대립각**
- 박기춘 체포동의안 처리 강행하려는 문재인 대표에 맞서 사실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
- ▶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치적 위상 강화
- ▶ 민변 출신 의원 주변에 포진시키고, '비노 개혁파' 자처
- 정책위의장에 최재천 의원, 민생본부장에 정성호 의원 각 임명

- 야당의 분열은 내년 총선 공천 등을 염두에 둔 계파간 흔탁한 이합집산으로 이어져, 원내 의정활동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

■ 한명숙 의원 대법원 판결 선고에 대한 야당의 반발

● 8. 20. 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 선고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개요

- ▶ [쟁점] 한명숙에게 정치자금 제공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 진술 번복한 **증인(한○○) 진술의 신빙성**
- ▶ [결론] 9억 여 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 중 ①1차 정치자금 3억 원 부분은 대법관 전원 일치로 유죄, ②2차 및 3차 정치자금 6억여 원 부분 다수의견 8명, 소수의견으로 나뉘어 유죄 인정 ⇨ **상고기각판결 선고(원심 징역 2년 형 확정)**

● 판결 선고 직후, 야당 의원들의 공식·비공식 항의 잇따르는 분위기

☑ 문재인 대표, 판결 선고 직후 기자 인터뷰 내용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전해철 법사위 여당 간사, 대법원 선고기일 지정에 불만 표시

“대법원이 여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눈치를 살피며 전격적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급하게 선고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이런식이라면 야당은 앞으로 대법원의 중요 정책에 협조해 주기 어렵다.”

- 판결 결과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입법추진 등을 위해 BH·여당의 요구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고기일 지정하였다는 형식적·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까지 문제 제기
- 8. 18. 야당 중진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발부와 맞물려,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는 정치적 공략 프레임 구축하여 당분간 사법부에 대한 공세 이어갈 분위기
- ⇨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미칠 파장 예의주시 필요

나. 대응 전략

▣ 하반기 국회에서 상고법원안 심사 일정 확보를 위한 물밑 작업 긴요

- 국정감사 연기 등 현실화될 경우, 법률안 심사 일정 매우 불투명 ⇨ 상고법원안에 대한 법사위 내부의 강력한 입법추진동력 없이는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 개시 장담할 수 없음
- [극복 방안①] 법률안 심사 드라이브 걸겠다는 법사위원장 의지와 역량 적극 활용
 - 19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에서의 법률안 심사 실적 매우 저조 ⇨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 자극 요인
 - 적어도 주요 법률안에 대해서는 집중 심사 등을 통해 연내 통과시키는 구체적인 응급 처방 요청
 - 특히, 법사위원장의 관심 법안인 특허사건 관할 집중 법안에 대해 BH가 긍정적 반응 보이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진 상황 이용 ⇨ 법원의 적극 찬성 및 지지 입장 어필하면서, 상고법원 법률안과 패키지로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 개시해 줄 것 요청
- [극복방안②] 상고법원안 처리 주도하는 역할 자임해 줄 수 있는 의



원 발굴하여 설득

- 법사위원장과 함께 상고법원안 처리를 리드해 줄 중량급 의원 필요 ⇨ ∵ 법사위원장 혼자서는 역부족일 수 있고, 자칫 법사위원장 관심 법률안 등 극소수 법률안만 처리될 가능성도 있음
- 여당의 홍일표, 이병석 의원, 야당의 이춘석, 우윤근 의원 등 접촉·설득
⇨ 하반기 국회에서 상고법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법률안 심사 추진에 적극 나서 줄 것 요청

▣ 지지부진한 법사위 1소위 대체하는 대안 조기 추진

- 법사위 1소위 논의 개시되더라도, 現 1소위 구도 속에서 상고법원 법률안 가결 기대는 요원
 - [문제상황 ①] 상고법원안에 반대하는 의원 1소위 대거 포진 ⇨ 김진태, 김도읍, 이한성, 서기호 등
 - [문제상황 ②] 이한성 1소위 위원장의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 논의 주도권 행사 등 역량 부족 ⇨ 소극적·수세적·비효율적 회의 진행 + 임기응변과 중재능력 부족
- 하반기 국회에서 충분한 법률안 심사 일정 확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긴급 상황을 극복하는 非常의 타개 방안 필요
- [타개책 ①] 국회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법안심사 특위 구성 ⇨ ① 여야 각 2인, 영향력 있는 중진급 의원 중 상고법원안에 대한 이해도 높은 의원들로 1소위를 대체하는 특위 구성, ② 특위에서의 밀도 있는 집중 심사를 통해 법률안 통과
- [타개책 ②] 상고법원안을 전체회의에 부의하여 처리 ⇨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전체회의 부의

☑ 의사일정 변경 전례

▶ 2005. 6. 29. 제17대 254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노회찬 의원 외 1인 찬성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상정 ⇨ 2소위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



▶ [표결 결과] 찬성 7인, 반대 2인으로 당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였으나, 결론 못 내리고 계속 심사

● 타개책 실행을 위한 정지 작업 착수

- 법무부 협상과 별도로, 법사위원장 등을 상대로 1소위 타개 대안의 실행 가능성 타진 필요
- 법무부와의 협상 실패할 경우, 마지막 돌파구 ⇨ 9월 정기국회 개시 이전에 법사위원장, 홍일표 의원 등 우호적 법사위원들과의 사전 교감 반드시 필요

■ 다양한 대안에 대한 사전 정책 결정 ⇨ 즉시 활용 준비 완료

- 법사위원별 관심 및 문제제기 사항에 대한 대안 종합 분석 ⇨ 법사위에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의 최종적 형태 결정
- 법사위원별 문제제기 유형에 따른 대안 분류

분류	문제제기	의원
I. 상고법원 인사 관련 사항		
1. 추천위원회	민주적 정당성 대법원장의 인사권 강화 관료화·계층화	홍일표, 이병석, 임내현, 김진태, 서영교, 서기호
2. 법조경력 상향	상고법원 신뢰 확보	서영교
3. 시니어 저지 도입	관료화, 전관예우 고위직 자리늘리기 사실심 충실화 역행	김도읍, 노철래, 이상민, 전해철, 이춘석, 서영교, 박지원, 서기호
4. 대법관 수 감축	고위직 자리늘리기 전관예우	없음 (이○○, 서○○ 교수)
5. 외부 법조경력자 임용	다양화·전문성 강화 관료화·계층화	홍일표, 김진태, 임내현, 서영교, 박지원
II. 대법원 사건 분류		
1. 필수적 심판 사건 확대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 심사기준 자의성, 예측가능성	정갑윤, 임내현
2. 사건 심사 기준 보완	중요 사건의 대법원 재판 보장	이한성
III. 재판 절차		



1. 특별상고 폐지	4심제	이병석, 노철래, 김도읍, 서기호
2. 특별상고 인지 환급	4심제, 국민 부담	이병석
3. 지역 접근성 제고	서울과 지방 차별, 지부 설치	김도읍
IV. 조직 -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대법원 재판받고 싶은 법감정 별도 법원 설치 부담과 혼란	우윤근, 이춘석, 임내현
V. 법률 규정상 도입 조치		
1. 한시법 규정	도입 컨센서스 미성숙	이상민
2. 결과 보고 의무 규정	설치 효과 불확실	이상민

● 하반기 국회 법률안 심사 진척 상황에 따라 대안 제시 ⇨ 일괄 제시 VS 순차 제시 등 미시적 방법론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 필요

- [일괄 제시 방안] (+) 지적된 모든 문제 영역에 대한 해결 방안 일거에 제시하면서 법원의 진정성 갖춘 노력 어필할 수 있음, (-) 반면, 여러 대안의 중첩적 채택으로 원안에서 지나치게 후퇴한 결과물 도출될 수 있음

- [순차 제시 방안] (+) 법률안 논의 상황에 조응한 대중적 대안 제시로 원안의 변형 최소화시킬 수 있음, (-) 반면, 문제제기 유형이 1~2개로 집중되지 않고 나열되어 부각될 경우, 대안별로 정교하게 우선순위 부여해야 하고 법안 심사 지체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 하반기 국회 상고법원안 심사 일정 3회 이내로 예상한다면, 모든 정책 결정된 대안 일거 제시하는 것이 조속한 법안 통과에 기여할 가능성 있음

■ **한명숙 의원 사건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적극적 해명**

● 2013. 9. 30. 대법원에 사건 접수된 후, 약 1년 11개월 만에 선고 ⇨ 오히려 여당이나 보수 언론 등으로부터 선고가 늦어진다고 비판을 받아온 사건이라는 점 부각시켜 설명

- 이 사건은 2014년 초부터 여당 등에서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요구했던 사건임 ⇨ 만약, 여당의 눈치를 살폈다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안에서 사건 접수 수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을 것임



-
- 최근에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대법관 전원 평의를 거쳤고 이를 통해 판결 선고가 성숙한 단계에 이룸 ⇨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까지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해 온 사건 ⇨ 전격적인 선고기일 지정이라는 주장은 억측에 지나지 않다고 설득



對外秘 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2015. 2. 9.

사법지원실(박성준)

1. 사건진행 개요

1) 제1심

-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7 공직선거법위반 등
 - 형사 21부 : 재판장 이○○, 이○○(주심), 오○○
 - 공소제기(불구속, 별건으로 구속, 2014. 9. 9. 형기만료 구속취소) : 2013. 6. 14.
 - 2013. 8. 26.부터 2014. 7. 14.까지 37회 공판기일 진행
- 2014. 9. 11. 판결선고
 - 국정원법위반 일부 유죄, 일부 무죄 : 정치관여행위 인정
 - 트윗 · 리트윗 673,077건 무죄 (이유무죄)
 - 공직선거법위반 전부 무죄 (이유무죄) : 선거운동의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 부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2)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 형사 6부 : 재판장 김○○, 김○○(고법판사, 주심), 윤○○(고법판사)
 - 2014. 11. 7.부터 2014. 12. 29.까지 8회 공판기일 진행 (증인신문 : 3명)
- 2015. 2. 9. 판결선고
 - 국정원법위반 일부 유죄
 - 트윗 · 리트윗 511,898건 무죄 (이유무죄) : 계정 441개 인정안됨
 - 공직선거법위반 일부 유죄
 - 트윗 · 리트윗 293,513건 무죄 (이유무죄) : 계정 441개 인정안됨
 - 2012. 8. 20. 이전행위 무죄 (이유무죄) : 대선국면 이전에 선거운동 입증되지 않음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법정구속 (상고심 구속만기 : 2015. 10. 8.)



3) 1심 2심 비교표 (사실인정 및 구성요건 해당성 차이)

행위태양	죄명	성질	공소사실	1심	2심	
					8.20. 이전	8.21. 이후
찬반클릭	국정원법	정치+선거	1,214	1,214	1,214	
	공선법	선거	1,057	×	0	1,057
오유 등 인터넷 글게시	국정원법	정치+선거	2,125	2,125	2,125	
	공선법	선거	114	×	13	101
트위터 (트윗·리트윗)	국정원법	정치+선거	786,698 (계정 1,157)	113,621 (계정 175/1,157)	274,800 (계정 716/1,157)	
	공선법	선거	446,844	×	17,314	136,017

2. 공소사실

▣ 공소사실 개요

- 피고인, 3차장, 심리전단장, 사이버팀 팀장 및 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 (공동정범)
-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아울러 (국정원범위반)
-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함 (공직선거법위반)
-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는 공직선거법위반(255조 3항 2호), 국정원범위반(18조 1항), 공동정범(형법 30조), 상상적경합(형법 40조)임
- 범죄일람표 기재 약 3년간의 행위를 포괄범죄로 봄

▣ 공소사실 요약

- 피고인 원세훈은 국가정보원장으로, 피고인 이○○은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피고인 민○○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임
- 국가정보원은 국내정치 및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원세훈은 국가정보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것이고, 이러한 성공적인 국정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잘못된 인식과 기조로 국가정보원을 운영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수행에 비판적인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과 등을 홍보하라고 반복하여 지시하였



음

- 이와 같은 피고인 원세훈의 지시는 피고인 이○○, 민○○를 통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하달되어, 위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의하여 불법정치관여 및 불법선거운동이 이루어짐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된 정치관여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음
- 구체적인 활동내역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 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2012. 8. ~ 2012. 12. 1,215건의 찬반클릭
 - ②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2009. 2. ~ 2012. 12. 2,125건의 글 및 댓글 작성·게시
 - ③ 트위터에서 2011. 1. ~ 2012. 12. 786,698건의 트윗 및 리트윗 작성·게시
 - 통하여 정치관여 범행을 저지르고,
 - 그 중 찬반클릭 1,057건, 글 및 게시글 114건, 트윗 및 리트윗 446,844건은 선거운동 범행에도 해당함

▣ 적용법조

●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8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서 생략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심 판결의 판단의 논리와 요지



가.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 유죄 인정

1)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

- 검사는 인터넷 사이트 및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 117개를 특정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117개 계정 모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계정임이 인정됨
- 검사는 트위터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으로 1,157개를 특정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중 175개 계정만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982개 계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의 입증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함
 - 425지논.txt('지논'), ssecurity.txt('시큐리티')('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
 - 313조 전문법칙 ☞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 인정되어야
 - 315조 당연한 증거능력 부정 ☞ 작성경위 불명, 업무상 작성 불명, 특신정황 불인정
 - 따라서 위 982개 계정 명의로 작성된 트윗·리트윗 부분은 무죄

2)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활동이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정보원법은 국내 정보의 경우“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한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입법취지나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한정적으로 제한한 규정임
-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활동은 북한의 대남심리전 실태를 알리는 내용이 아니라 국정을 홍보하고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은 비판하는 내용에 해당하고, 그 활동 방법도 신분을 감춘 채 일반인으로 가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글이나 트윗을 게시하고 찬반 클릭 활동을 한 것인바, 이러한 활동을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행위로 볼 수 없음

3)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이 수행한 사이버 활동의 내용은, ① 국책사업 및 국정성과를 홍보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 및 여당을 지지하고, ②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야당 및 정치인들을 반대·비판하는 활동임이 확인되므로, 이는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한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함

4) 피고인들의 공범 성립 여부

- 원세훈이 전부서장회의를 포함한 각종 회의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이○○, 민○○ 등 지휘계통을 통하여 그대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전달되고,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은 이와 같은 원세훈의 지시사항에 터잡아 매일 “이슈 및 논지”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음이 인정됨
- 원세훈의 전부서장회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일관되게 적극적인 국정홍보를 지시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 및 정치인을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한미 FTA 체결, 세종시 사업 등 주요 국정현안 및 정치적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홍보 지시까지도 하였음이 인정됨
- 피고인 원세훈이 비록 정치개입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피고인 이○○, 민○○ 역시 이와 같은 피고인 원세훈의 지시를 전달하는 한편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됨.

5) 소결론

-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찬반클릭 1,214건, 글·댓글 2,125건, 트윗·리트윗 113,621건은 모두 유죄
-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트윗·리트윗 673,077건은 무죄 (포괄일죄 중 이유무죄)

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전제한 법리

-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개념



- 어떠한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는 구분되는 개념임(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
- 기존부터 계속 해 왔던 행위
 - 선거 시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특정 정책을 지지·반대하여 온 경우 그 정책이 선거 시기에 선거쟁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 정치적인 행위와 선거운동의 관계
 - 선거운동은 특정한 유형만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선거운동의 행위태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다만, 행위에 더하여, 주관적인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날 것 요함
 - 그 목적은 특정한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한 재판부의 평가(사실의 인정)

-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 (피고인에 불리한 사정)
 - 제18대 대통령선거 시기 즈음에도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 성과 등을 홍보하는 글을 작성 및 게시
 -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는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글을 작성 및 게시
 - 제18대 대선의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 등과 그들의 소속 정당에 대한 반대·비방 취지의 글도 상당수 포함
 - 앞서 인정한 사이버 활동 내용 중 특히 정치적인 부분 참조
-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
 - 원세훈의 전부서장회의 발언을 살펴보더라도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의 지시라고 볼 만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
 - 오히려 원세훈이 “대선정국을 맞아 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 “전 직원들이 선거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 등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명확히 지시



- 선거운동은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이어야 하는데, 검사가 선거운동의 시작점으로 기소한 2012. 1.경은 제18대 대선 후보자의 윤곽조차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
- 기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국정홍보 취지 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선거운동의 계획성이나 능동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
-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지시로 볼 수 있는 “이슈 및 논지”에도 선거 관련된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
- 통상적인 선거운동의 경우라면,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검사의 공소사실을 보면 트윗 및 리트윗 건수가 2012. 10. 이후 뚜렷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의 정도 :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 선거운동의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을 인정하기 부족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이버 활동이 제18대 대선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위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의 지시를 하여 그에 따라 선거운동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

4. 항소심 판결의 판단과 논리의 요지

가. 증거능력과 사실인정 판단의 차이 (1심에 비해 추가된 부분)

1) 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

- 425지논.txt(‘지논’), ssecurity.txt(‘시큐리티’)1)2)3)(‘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

1) 김○○(심리전단 직원) 명의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첨부파일 작성여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2) 지논 파일 : '논지'의 앞뒤 글자를 바꾸어 '지논'파일로 명명한 것으로 보임. 961KB의 텍스트 파일로서 출력물은 A4용지 420여 장 분량. 주로 국정원(원세훈)의 '이슈와 논지'가 날짜별로 기재되어 있음. 트위터의 계정 관리법도 들어 있음
 3) 시큐리티 파일 : 영어단어 'security' 앞에 s를 하나 더 붙인 형태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 파일.



- 313조 전문법칙 ☞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 인정되어야 하므로, 법정에서 진정성립 인정된 바 없어서 증거능력 부정 (1심 판단과 동일)
- 315조 2호, 3호에 의한 '당연한 증거능력' 인정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계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기록에 의한 각종 증거(김○○의 진술, 김○○의 이메일 및 첨부 파일 활용 방법, 김○○ 작성 다른 이메일 등과 비교, 김○○만이 알 수 있는 정보의 기재 등) ☞ 이 사건 파일의 작성자는 김○○임을 알 수 있음
- 문서 작성의 계기 : 업무수행
- 업무 관련성에 관한 김○○의 진술, '이슈와 논지'의 전달 체계 및 업무에서 차지하는 기능,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와 지침의 기재, 장기간 작성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문서를 작성해온 정황 ☞ 업무상 필요한 이슈와 논지 등을 매일 매일 정리해둔 문서 (지논 파일)
- 업무 수행 방법에 관한 핵심 정보의 기재, 업무매뉴얼의 내용과 일치하는 활동 내역의 기재, 장기간 작성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문서를 작성해온 정황 ☞ 여러 달 동안 트위터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필요한 트위터 계정 등을 그때 그때 모아서 정리해둔 문서 (시큐리티 파일)
- 보안유지 및 비밀엄수 당부 기재, 국정원의 보안성, 형식 자체가 타인 보고 용이 아니라 자기 메모 형식, 기초적 정보의 중요성, 개인적 경조사 일정도 일부 포함 ☞ 허위 개연성 적음 ☞ 315조 3호 특신정황도 인정됨

2)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시큐리티 파일)

- (참고사항 : 형사심의관 의견) 트위터 계정 인정의 중요성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크게 찬반클릭, 인터넷 사이트(오늘의 유머) 등에서의 글 게시, 트위터활동(트윗 · 리트윗)으로 이루어져 있음

출력물은 A4용지 19장 분량. 심리전단 직원들 성명 앞 두 글자와 함께 트위터 계정이 나열되어 있음



- 그런데, 찬반클릭은 단순히 남의 글 또는 기사에 ‘찬성’ 또는 ‘반대’ 클릭 행위
- 인터넷 사이트에 직접 글을 쓰는 것은 상당한 분량의 글을 써야 하는 행위로서, 그 내용을 노골적으로 쓰기는 곤란하고, 그 개수도 많기 어려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선거관련 내용은 총 114건)
- 반면, 트위터는 약 2~3줄의 내용을 전송하는 것으로서, 짧은 글에 축약적으로 선거 관련 메시지를 전파하기 적절하고, 리트윗 등으로 손쉽게 확산이 가능하며, 공소사실에 의한 개수도 매우 많음
-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팀이 ‘정치관여’를 넘어 ‘선거개입’(선거법적용)에 자신 있어 한 것도 트위터의 발견 이후였음
- 그런데, 트위터 본사(미국)에 대한 압수수색(국제사법공조)이 불발되고 나서, 그 트위터 계정이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계정인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극히 적었음
- 1심 단계에서부터 트위터 인정여부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입증의 관건이라고 예측되어 왔음

행위 태양	죄명	성질	공소사실	1심	2심	
					8.20. 이전	8.21. 이후
트위터	국정원법	정치+ 선거	786,698 (계정 1,157)	113,621 (계정 175/1,157)	274,800 (계정 716/1,157)	
	공선법	선거	446,844	×	17,314	136,017

- 공소사실 : 1,157개 계정 특정
- 1심 : 175개 계정만 인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 계정만 인정)
 - 직원들이 사용을 인정한 계정 116개 + 트윗덱4) 연결 계정 59개
- 항소심 : 716개 계정을 인정 (사실상 검사가 지목한 모든 계정을 인정)
 - 시큐리티 파일 추출 269개 + 트윗덱 연결 422개 + 직원들 이메일 기재 계정 25개
 - 트위터피드6) 441개만 부정 (검사가 특정한 트위터피드 466개 - 이메일 기재 25개)
- 트위터 계정을 인정함에 따라 선거 관련 글의 인정갯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 약 13만건 이상 인정

4) 여러 개의 트위터 계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트위터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고 있어야 등록 가능

5) 검사(1심과 2심도 동일)는 트윗덱을 통하여 기초계정과 20회 이상 같은 글을 동시에 트윗한 계정을 트윗덱 연결계정으로 추출하였음

6) 트윗덱과 달리 사전등록에 원 계정의 비밀번호 요구하지 않음. 일반인도 해당할 가능성 있음



3) 원세훈의 지시 내용의 해석

- 아래와 같은 글은 대부분 1심에서도 원세훈의 지시로 인정된 바 있음
- 항소심은 아래 글을 ‘정치개입’ 지시일뿐만 아니라, ‘선거개입’ 지시에도 해당한다고 파악함
 - 1심에서는 “선거운동 지시로 볼 만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이라 판시
 - 한편, 아래 글 중 8번, 11번은 1심 판결에는 적시되지 않은 내용임

순번	일자	발언 요지	비고 (관련 선거일정)
1	2010. 1. 22.	지방선거도 이제 있고 계속 이제 좌파들이 그것도 자기들 여기 자생적인 좌파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뭐냐 하면 북한 지령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싸움을 좀 해서 우리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한 해가 되도록 같이 노력합니다.	2010. 6. 2. 지방선거
2	2010. 4. 16.	사실상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온 게, 요번에 지방선거에서는 2012년도에 정권을 바꿀 수 있도록 다 모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어요, 단일화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 모으라는 거는 희망과 대안 뭐 등 다 만들지만, 어쨌든 선거에는 단일화해라 하는 게 북한의 지령이라고,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은 뭐 중복단체 아니야. (...) 일반 국민이 볼 때는 다수가 반대를 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만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를 다 이용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지금. 어쨌든 그런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잡고 좀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 4.~5.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논의
3	2010. 6. 25.	천안함 발표가 5월 20일이고 5월 24일날 대통령께서 천안함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담화를 하시고 몇일 뒤에 바로 전쟁과 평화하면서 야당 후보가 뭐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국정원의 그 많은 직원들은 제대로 거기에 대한 저거 한 번 없이 넘어갔다.	
4	2011. 5. 20.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도지사 당선되었고, 경기·인천 등 접적 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것은 적하고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임	2011. 4. 27. 강원도지사 최문순 당선
5	2011. 8. 22.	8. 24. 주민투표와 관련,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누구나 참여하되, 각자의 의견은 투표로 보여주면 되는데 현재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	2011. 8. 24.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6	2011. 10. 21.	지금 인터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자체가 중복좌파 세력들이 다 잡았는데 점령하다시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안 세우고 있었다.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 10월 26일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런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뭘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하고 같은 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나가야 되겠다. (...) 작년엔 지방선거 때 전쟁과 평화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가지고 끌고 나갔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p>다는 자체도 결국은 국민들의 의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교육도 시켜야 된다. (...) 지난 선거 때 전쟁과 평화 이런 것 해가지고 국민들이 위기위식을 느껴가지고 전쟁 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2번 짝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선 안되지 않냐.</p>	
7	2011. 11. 18.	<p>지난달에는 재보선이 있었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예요. 내놓은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보니까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정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 인터넷 같은 데도 트위터라든가 SNS라든가 온라인 상에서 별말 다 지어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한 분들은 그런 쪽에 참여 안하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 말을 믿어요. 제일 문제는 사실이 아닌데 저 사람들은 그냥 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일부러 허위사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 선거전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A, B 후보를 볼 때 A 후보가 여성표는 10% 이기고 있었거든, 근데 결과는 7%인가 졌더라고. 진 게 1억 피부샵이예요, 딱게 아니고. 그리고 또 부재자투표에서 보면 A후보가 다 이겼어. 부재자투표라는게 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이겼는데 그것은 1억 피부샵 나오기 15일전에 했기 때문에. 근데 1억 피부샵 이후에 젊은 세대한테 왕창 졌잖아요. (...) 내 얘기는 흑세무민하려는게 아니고 흑세무민 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가.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 상황을 보고를 해요. (...) 작년 선거 때도 보니까 보수세력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결국은 분열 때문에 졌잖아요.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하고 지난 선거 때도 그런 선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나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협심해 덤벼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요. 지금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문제가 아니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p>	<p>2011. 10. 20. 나경원 후보 '1억 피부샵' 보도 및 선거 쟁점화, 2011. 10. 26. 서울시장 박원순 당선</p>
8	2011. 12. 16.	<p>지난 재보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이 내년 총·대선을 겨냥하여 중복좌파 등을 통한 국내 선거 개입시도가 노골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가 사전에 확실히 대비해야 할 것임</p>	<p>2012. 4. 11. 19대 총선, 2012. 12. 19. 18대 대선</p>
9	2012. 1. 6.	<p>우리의 경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 대선도 예정되어 있어, 적과 중복 세력들이 남남갈등 조장은 물론 주요 국정성과 폄하를 위해 준동하고 있는 상황임. 이들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관련 사안에 대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p>	<p>위와 같음</p>
10	2012. 2. 17.	<p>진짜 금년 한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한해 아닙니까.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중복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해든지 간에 다시 정권을 잡을라 그러고, 여러분들의 보고서에서도 봤겠지만 지금 북한이 이제 총선에서 야당 되면 강성대국은 완성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일은 죽도록 해놓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 가만히 있어. (...) 북한이 공갈치니까 달래야지 우리가 또 안 다칠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들이 다수가 되고 그게 2010년도 지방선거의 전쟁과 평화에서 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또 아직까지 그러고 있단말이야.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금년 한 해가 돼야 되요. 그리고 우리 국정원은 금년에 잘 못 싸우면 국정원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알잖아. 국가보안법 없애겠다고 그러고 한미</p>	<p>위와 같음</p>



		FTA 뭐 등등 개들 매일 하는 소리 그건데 우리 조직이 없어지는 거야. (...)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북한이 선거에, 우리나라 중북세력과 같이 저거해서 총선에 개입하거나 사회분열을 기도하는 것을 철저히 좀 차단을 해야 되겠고.	
11	2012. 3. 16.	북한이 한쪽에 계속하고 있는 그 부분은 4.11 선거라든가 금년 연말의 대선 같은 거를 대비해서 자꾸만 우리 국내의 중북좌파들의 입지를 넓혀 줄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확실하게 끊어줘야 돼요.	위와 같음
12	2012. 6. 15.	최근 중북 논란이 불거진 틈을 타 북한은 우리 사회 분열을 부추기고 노골적으로 대선 개입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확실하게 대처해야 할 것임. 또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뿐 아니라 국내 중북좌파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 그 동조세력들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임. 중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제 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존재의미를 찾아야 할 것임	위와 같음

나.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 유죄 인정 (1심과 기본적으로 동일)

1)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활동이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정보원법은 국내 정보의 경우“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한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입법취지나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한정적으로 제한
-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활동은 북한의 대남심리전 실태를 알리는 내용이 아니라 국정을 홍보하고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은 비판하는 내용에 해당하고, 그 활동 방법도 신분을 감춘 채 일반인으로 가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글이나 트윗을 게시하고 찬반 클릭 활동을 한 것인바, 이러한 활동을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행위로 볼 수 없음

2)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 정치관여 행위
- ① 국가기관의 정책홍보가 국정원법에 따른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② 국정원의 홍보활동은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에 대한 반대로 이해됨 ⇨ 정당정치에 바로 관여한 것임. ③ 정책 홍보라는 명목으로 언제든지 금지된 정치관여를 할 수 있게 됨. ④ 사이버 공론의 장에 국정원이 직접 개입하여 익명의 일반 국민인 양 트위터 등 감성이나 인상 변화에 호소하는 방법을 활용 ⇨ 비례



의 원칙 위배

- 이는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한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함**

다.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 유죄 인정 (1심과 다름)

1) 전제한 법리 : 논리구조가 1심과는 다소 다름 (다른 부분 **파란글씨**)

■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 국가기관이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사용하여 정치적 세력 간의 자유경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됨(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 이러한 헌법적 요청 고려하면, 형벌조항의 확장 해석을 경계하는 한편으로 이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내지 공익의 중대한 의미와 가치도 균형있게 고려 필요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개념 (동일)

- 어떠한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는 구분되는 개념임(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

■ 기존부터 계속 해 왔던 행위 판례이론 ➡ 법리의 전제에서 사용하는 대신 뒤에서 보듯이 '대선국면'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인정됨을 논증함

■ 선례의 의미와 정신을 고려해야 함

- 기자회견 과정에서 주로 야당의 유력 후보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정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비판하였으며 자신의 출신당 후보자를 지지하겠다는 적극적인 취지의 발언
-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7)

2) 사실관계의 인정과 판단

7)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관위에 대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취소심판 기각 사건



▣ 행위의 능동성 및 계획성

● 사이버활동이 이루어진 과정이 체계적임

- (예시) 안철수 후보 비방 이슈와 논지 (지논 파일 인정) ⇨ 같은 날부터 3일간 이슈와 논지와 동일한 내용의 트윗 글 363회 게시(시큐리티 파일 인정)
 - “30대 목동녀나 주식뇌물 공여 의혹 등 특정 후보에 대한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를 국가기관의 뒷조사 자료인 양 몰고 가는 것은 검증 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몰타기 하려는 꼼수이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적반하장 “

● 전파가능성 높은 사이버활동 방법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이용

- (예시) 구체적인 사이버활동 방법이 기재 (지논 파일 인정)

1. 글 작성 제출하면, 기존 팀 논지작성 일괄전송과 특히, 다를 것 없네?
 파워팔로워 글 전파, 영향 확산
 => 아침에 '오늘의 핫이슈' 지정해 지시
 오전에 우파글 확산을 오후시간에 활용
 * 단체 1:1 우파 명성 글을 선택해 확산 허 = 확산 글 id全體 참여
 * 우파 협조, 글 집중 확산 + 1-2개만 플러스 확산
 시간대를 분할해 24시간, 타임라인에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집중

- 다수계정, 다수 글, 트윗덱, 트위터피드 등 이용
- 팔로워 증대를 위한 노력 및 보고 (시큐리티 파일 인정)

▣ 낙선을 위한 행위로서의 목적성

● 시기별 사이버 활동의 내용 및 규모 변화

- 2012. 1.부터 6.까지는 정치글이 선거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음
- 7월부터 비중이 역전되어 선거글이 정치글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
- 절대적인 수치에서도 2012. 8. 이후 선거글이 이전 선거글에 비하여 압도적 많음
- 8월에 선거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8. 20. 후에 현저하게 증가하는 흐름도 확인

● 2012. 8. 20.은 대선국면 도입시기로 판단될 수 있음

-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확정
-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특정 후보자의 존재와 이를 인식한 행위'를 선거운동 개념 성립의 전제
- 유력한 대통령 후보 예정자 중 한 사람이라도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됨으로써 선거경쟁구도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시점



- 2012. 8. 20. 이전 선거글은 주로 안철수에 대한 비난과 반대
- 2012. 8. 21. 이후 선거글은 안철수, 문재인, 민주당, 이정희, 통진당 반대
 -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 및 의혹 제기, 복지 문제 등 주요 대선공약 비판, 후보 단일화 과정 비판 등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
 - ① 안철수 후보 반대 : 자질 부족 및 각종 의혹 제기, 후보 단일화 비판, 모호한 입장표명 비판, 이념성향 비판, 측근 비판, 단순 비방
 - ② 문재인 후보, 민주당 반대 : 각종 의혹 제기, 대선 공약 비판, 후보 단일화 비판, 이념성향 비판, 前 정권 관련 비판, 민주당 인사들 비판, 단순 비방
 - ③ 이정희 후보, 통진당 반대 : 부정경선 등 비판, 대선 TV토론 관련 비판, 단순 비방
 - ④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지지 : 자질 긍정 평가, 박정희 대통령 옹호, 인혁당 등과 거 논란 해명, 각계 지지 선언 홍보
- 다수의 유형별 트윗 글 사례 인정 (판결문 중 첫 3개씩만 발췌)
 - 안철수 후보 반대

일시	내용	작성 계정
2012-09-04 13:38:58	RT @vincere12: 대선 나간다고 한 적 없다. 호출 당한 케이스다! (안철수) / 차라리 대통령자리가 딱지사서 분양받는 자리인줄 알았다!라고 하시는게 상식적 아닐까요?	kangsane12 등
2012-09-04 14:43:51	안철수가 사당동과 역삼동 등 강남에서만 산걸 보니 강남스타일이긴 한데...맛이 간 딱지 스타일이란게 문제네...거짓말이 계속 밝혀지고 주가는 연일 하락중이다...미소 뒤에 숨은 거짓이 종말을 향해 달리는가???	davejust46
2012-09-05 15:37:16	RT @koreaspiritnana: 사람들이 박근혜가 박정희 후광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긴 간철수야 말로마마보이 이고 아버지 품에서 놀아나고 있는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경선 절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민주당 멘봉 이건 허경영 이...	qkrqudwo2011 등

-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반대

일시	내용	작성 계정
2012-09-08 05:59:51	RT @koreaspiritnana: MB가 아무리 인기 없어도 문재인 안철수가 결함 투성이라도 애국세력은 새누리당 좌익들은 야권에 표를 줄겁니다 그래선 여야 모두 달라 지지 않습니다 야권이 중복과 거짓선동 부패와무능력을 탈피하여 대안세력...	qkrqudwo2011 등
2012-09-16 22:52:06	RT @freedomnorth: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북관과 안보관입니다.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과 연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집권하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정신없이 퍼주겠다는 세력들은 절대로 집권해서는 안된다고 ...	harpesang 등
2012-09-17 14:11:50	RT @kar22sma: 문재인이 오늘 국립묘지 방문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들렀다네요. 편협하고 응졸한 역사인식이 대통령의 그릇이 아님을 보여주네요. 봉하마을까지 들린 박근혜와 비교됩니다	kangsane12 등



-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 반대

일시	내용	작성 계정
2012-09-25 14:53:11	종북당 종북녀가 이번 대선출마에 "진보의길을 의연히 갈것"이라 한다, 이제는 종북녀까지 대선에 출마하는거 보니까 막장 대선이 되게 생겼구나, 그러고는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다고?? 아예 대놓고 김정운을 위한다고 말할 것이지, 말을 돌리기도 어렵겠다	sshinbal 등
2012-12-04 20:51:11	종북당 종북녀가 오늘 tv대선토론에서 박근혜 저격수 역할을 하러 나왔구나, 그 미친녀는 말도 잘하네, 지가 불리한건 무조건 아니라고 답도 않고 자기 질문에 자기 미화만 하는구나, 종북당 너희들이 당 자체 행사시에 애국 ...	sung455 등
2012-12-04 21:16:42	종북녀 말만 열면 거짓말하고, 질문을 하면 답변은 하지도 않고 자기 미화만 하네, 흔한말로 자기똥은 향기롭고, 남똥은 구리다는 식이다, 종북녀 이녀는 똥린 입이라고 말은 진짜 잘한다, 확실히 종북녀를 아무나 하는게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역시 맞네	queen8899 9 등

-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지지

일시	내용	작성 계정
2012-08-27 15:34:43	RT @yoonjujin: 박근혜 후보의 경험 부족을 문제삼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행정부 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당 대표로서 굼직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치 경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jiminee7 등
2012-08-20 14:05:47	RT @SDenn722: 박정희 재임시절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이만배 상승했다. 박정희 없이도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가능했을거라는 논리는 스티븐잡스없이 아이폰이 탄생했을거라는 논리와 동일하다. 신이 내린 지도자 박정희, 그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축복이다.	kimhyunju23 등
2012-09-12 16:09:12	박정희 박근혜 혈뜻는 트윗 글이 많이 보이는거 보니까 대선이긴 대선 이구만ㅎ 그런데 박근혜 혈뜻는 찌질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거ㅎ우습기만하네	shore0987

● 글 내용과 게시시점의 정치적 연관성 인정됨

- 2012. 8. 20. 새누리당 후보 확정시 ⇨ 박근혜 후보 화합과 포용 이미지 강조
- 2012. 8. 21. 안철수 후보 립살롱 발언 논란 ⇨ 립살롱 일주일 이상 리트윗
- 2012. 9. 3. 안철수 후보 아파트입주권 논란 ⇨ 도덕성 비판
- 2012. 9. 4. 박근혜 후보 사형제 존속입장 ⇨ 사형제 반대 민주당 후보 비난
- 2012. 9. 6. 안철수 후보 불출마 종용 논란 ⇨ 안철수 비방
- 2012. 9. 10. 박근혜 후보 인혁당 두 개판결 발언 ⇨ 박정희 긍정평가
- (중간 생략)
- 2012. 11. 23. 안철수 후보 사퇴 후 - 안철수 반대 트윗 현저히 줄어들고, 반대로 민주당 반대 글 현저히 증가

■ 2012. 8. 20. 대선국면을 전후한 행위의 평가

● 대선국면의 설정



- 대선은 단순한 정당선거 아닌 인물론이 중요
- 대선정국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시점은, 유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선택을 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위와 같은 여러 요소가 후보자 및 소속 정당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반대의 관점과 의견도 제시되어 서로 진지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무렵이라고 봄이 타당
-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지지는 경쟁자로 예정된 다른 후보자 측 또는 다른 정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해
- 위 무렵 이후 선거 쟁점에 관한 상호공방의 결과가 일정 정도 지지율의 변화로 반영됨
- 야권 후보자의 단일화 여부가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끌면서 그에 따른 지지층 및 지지율의 변화가 크게 부각
- 위 후보자 확정 시점 이전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정치적 상황이 발생

● 대선국면 이전의 활동 평가

- 유력 정치인 및 특정 정당에 대한 일상적 관심의 연장선에서 정치인이나 정당으로의 역량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에 초점
- 4월 총선과 대통령선거는 성격, 쟁점, 진행 양상 등 모든 면에서 명백히 구별
- 정치글과 비교시 선거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고 절대적인 숫자도 적음

● 대선국면 이후의 활동 평가 ☞ 선거운동의 목적성과 범의 인정 가능

-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대선국면이 시작되었다고 인식될 수 있는 시점
- 국정원으로서, 적어도 위 기간 동안만큼은 선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가치와 비중을 보다 무겁게 인식
- 이전과는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선거 관련 사이버 활동의 규모를 증대
- 구체적인 활동 내용 역시 후보자 등의 동선과 활동, 당시 나타난 중요 선거쟁점 등에 정확하게 대응

3)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반박

▣ '정치적 중립, 선거 불개입' 지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아래와 같은 발언 자체는 인정

- 원세훈이 “대선정국을 맞아 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 “전직원들이 선거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 등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수 차례 지시

- 그러나 위와 같은 지시는,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을 하지 말라는 데 방점을 둔 것이라기 보다 대선 정국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이 외부에 드러나 문제 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하라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
 - 표현 자체가 불분명
 - 사이버 활동을 독려하는 발언 또는 지시를 같은 시기에 함
 - 원론적 당부와 구체적 업무지시의 괴리로 직원들의 인식에도 혼란
 - “원론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큰 틀에서의 원칙적 지시였고 실제로 업무의 직접적인 지시가 되는 이슈 및 논지가 매일매일 하달되는데 그 내용이 정치적 중립과 배치되는 성격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일선에서 활동해야 하는 저 같은 파트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다.”

5. 항소심 양형의 이유

▣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평가

- 헌법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한 것
-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평등한 자유경쟁기회를 침해
- 왜곡 및 침해의 정도를 두고 정치 및 선거에 관여한 모든 정당과 정치인,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에 의견 대립을 야기할 가능성
-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 및 조직 중 일부를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대한 반대 등의 활동에 활용
-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선거운동의 주체, 시기, 선거운동원의 제한, 비용의 규제 등에 관한 다양한 제한 규정을 사실상 모두 어긴 것

▣ 엄정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 강조

▣ 법정구속



6. 참고법리 : 디지털 파일의 증거능력

가. 형사소송법 규정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계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나. 전문법칙의 문제

1) 쟁점

- ▣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범위
- ▣ 전문법칙 적용시 '작성자의 진술' 외에 다른 방법(IP 주소 등)에 의하여 진정성립 인정이 가능한지

2) 선례

- ▣ 대표적인 선례 - 모든 판례가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

● 99도2317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



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

● 2007도7257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

3) 전문법칙 적용의 기준

▣ 그 내용 (문자정보의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그 내용이 적시하는 사실을 요증사실로 하는 경우 : 전문법칙 적용

▣ 그 문건의 존재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 : 전문법칙 적용대상 아님.

● 증거물로서 검증의 대상이 됨

▣ 99도2317 판결

다만, 이적표현물을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서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러한 내용의 문건의 존재 그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이므로 적법한 검증 절차를 거친 이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한 공소사실에서 ‘이적성이 표현된 문건’ 자체

▣ 2013도2511 : ‘왕○○ 총책 사건’(서울중앙 2011고합1131)의 대법원 판결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령한 지령 및 탐지·수집하여 취득한 국가기밀이 문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나 편의제공의 목적물이 문건인 경우 등에는, 문건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문건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들의 내용 대부분은 그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문건 기재 내용이 진실한지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국가기밀 탐지·수집에 관한 공소사실에서 ‘국가기밀이 기재된 문건’

● 편의제공에 관한 공소사실에서 편의제공의 목적물이 문건인 경우

● 한편,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이 간접사실로 인정될 수는 있음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의 특수잠입·탈출, 회합의 점에 관하여, ‘공소의 9 선생앞: 2011년 면담은 1월 30일 ~ 2월 1일까지 공소의 9과 ▽▽선생과 함께 북경에서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파일들이 피고인 1의 컴퓨터에 ‘저장’ 되어 있었던 사실을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 중 하나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내용과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5가 북한 공작원들과 그 일시경 실제로 회합하였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문건 내용이 진실한지가 문제 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파일이 피고인 1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해당한다고

4) 전문법칙 적용시 증거능력 인정방법

■ 원칙 : 99도2317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314조에 의한 예외 인정되지 않음

■ 2000도486 판결

● 검사의 주장

- 검사의 상고이유는, 해당 증거가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등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임

● 판시사항

… 논지는 이 사건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또는 제314조, 제315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나, 위 문건들은 그 작성자조차 명료하지 않은 것들로서 위 각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작성자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 314조 적용 불가

■ 2007도7257 판결

● 검사의 주장(상고이유)

- 전문증거로 보더라도, 디지털증거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작성자의 진술’이란 작성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이 아니라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행하는 모든 진술’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함. 특히 전자문서의 경우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 유무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진정성을 탄핵할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성립의 진정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함
- 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5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어야 함

● 판시사항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경우 논지와 같은 정황자료만으로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5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에서 본 법리에 배치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5조의 요건을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2012도16001 판결

● 판시사항 : 진술거부권 행사시에도 314조로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라고 정함으로써, 원진술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를 들고 있다. 위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사유로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라고 각 규정한 것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 예외사유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현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283조의2 제1항), 진술거부권을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진술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위 판결의 연구관보고서 기재내용

- [작성자/진술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 진술 이외의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여부 → 부정적] 민사소송의 경우 다양한 방법(작성자가 아닌 제3자의 증언,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으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진정성립의 증명 방법을 오직 ‘작성자/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 한정하고 있음 →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전자문서, 문서 파일 등)의 경우, 작성 당시 입회인 등의 진술, 문자정보에 남은 작성 관련 흔적(전자서명, 아이디, 비밀번호, IP 주소 등), 초안 문서의 존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위원회 재상고 사건, ○○회사 사건 등에서의 검사의 주장 등)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한 진정성립의 증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고한 판례라고 할 수 있음

5) 소결

- ▣ 판례의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보임 (여러 사안, 동일한 내용과 기준에 의한 판시 반복)



- 전문법칙 적용의 기준
 - 문자정보(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인 경우 : 전문법칙 적용
 - 내용의 진실성과 무관한 경우 : 증거물인 서류에 해당 (전문법칙 비적용)
 - 정황증거로서의 간접사실 : 증거사용 가능
- 전문법칙 적용시 증거능력 인정방법
 - 오로지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서 진정성립 인정되어야 증거능력 인정
 - 컴퓨터의 동일성 등 간접적인 사실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불가
 - 작성자의 불명료, 피고인의 진술거부는 314조 예외사유 불해당
- ▣ 결국, 그 증거(파일)의 내용이 무엇인지 및 그 증거로 입증하고자 하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위 판례의 '적용'이 문제될 뿐인 것으로 보임
 - 해당 공소사실과 해당 증거의 관계상 판례가 말하는 '문자정보의 진실성'이 요증사실인지 여부가 문제됨

다. 315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증거의 문제

- ▣ 전문법칙과 31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임
 - 대부분 검사는 추상적으로 314조, 315조에 의한 예외사유를 주장하여 기각되나, 이는 314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위 사례들 중 315조(상업장부, 업무상 통상 장부) 해당 여부가 정면으로 판시된 사례는 없음
- ▣ 즉, 3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 적용대상(그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어야 요증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이라 할지라도 독립적으로 315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다만, 315조 해당여부 또한 판단이 용이한 것은 아님
 - 인정된 사례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9 판결

메모리카드에 기재된 내용은 공소외 2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를 전후하여 상대 남성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또는 공소외 2가 고용한 또 다른 여직원이 입력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소정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로서 그 자체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라고 할 것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서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외에도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증 제8호)의 현존 및 기재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수첩(증 제8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1989년경부터 공소의 A로부터 동인이 추진하고 있던 어로확보를 위한 준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이 사건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는 한’ 피고인의 금전출납을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증거라고 할 것인즉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012도16001 판결(인정하는 취지 판단이 기재된 사례)

원심은, ‘공소의 1 USB 문건’ 과 ‘공소의 2 제출 서류’ 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문서들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공소의 1 USB 문건’ 중 선거운동원들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표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공소의 2 제출 서류’ 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공소의 1 USB 문건’ 중 선거운동원들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표시한 부분은, 피고인 1이 선거운동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원들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그때그때 일상적, 계속적, 기계적으로 확인하여 작성한 출결부를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출결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 에 해당하고, ‘공소의 1 USB 문건’ 중 선거운동원들이 실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표시한 부분도 위 출결부의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컴퓨터파일로 옮겨 적는 형태로 작성된 것이 인정될 그 경우 역시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 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표시 부분까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선불리 단정할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라.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이유

■ 전문법칙 적용 → 진정성립 인정되지 않았음

- 이메일 첨부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ID가 기재되어 있음
- 그 ID를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어야, 해당 ID에서 작성된 글



이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글임을 인정할 수 있음

-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글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위 ID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라는 그 문서의 생략된 취지가 진실함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전문법칙 적용될 것으로 봄이 타당

■ 315 적용도 부인함

- (참고) 1심 판결문 기재내용
 - "425지논.txt" 파일(이하 '425지논 파일'이라고 한다)에는 광우병 문제, FTA 문제, 제주해군기지 문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 등 다양한 정치적 이슈 또는 대북 이슈에 관한 내용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ssecurity.txt" 파일(이하 '시큐리티 파일'이라고 한다)에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로 보이는 이름의 앞 두글자와 다수의 트위터 계정, RSS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파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작성자 및 작성·보관 등의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② 설령 위 각 파일을 김○○이 작성하여 보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 파일의 내용이 모두 업무와 관련된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업무상 작성한 문서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또한 위 각 파일의 내용이 인터넷상 사이버 활동에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하나 그에 기재된 내용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파일이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 문서라거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파일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는 없다.

■ 결국, 원세훈 사건에서의 이 사건 파일이 31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문서의 실제 모양, 작성 경위, 작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7. 종합 검토 (형사심의관)

가. 심각성

- 이 사건에서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원세훈에 대한 비난) 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8) Rich Site Summary의 약자로,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 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쉽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 2심이 독립적인 증거조사를 광범위하게 한 것은 아님 →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르게 판단하였음
- 대법원의 구성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된다는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음

나. 1심과 2심의 판단차이의 핵심

1) 전제 법리의 차이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

- 선거운동의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는 공통적으로 인용하고 있음
-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인정의 엄격성에 보다 치중
 - 선거 영향 미치는 행위와 구분되는 개념(2006도9392 판결) 강조
 - 기존부터 계속 해 왔던 행위 판례이론(2011도9243 판결) 적극사용
 - 선거 시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특정 정책을 지지·반대하여 온 경우 그 정책이 선거 시기에 선거쟁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위 판례의 사안) :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 종전(2002년경)부터 하던 단체 →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무상급식이 선거쟁점으로 부각 → 종전부터 해오던 무상급식 정책지지 행사는 선거운동 아님 (다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 언급한 행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음)
 - 정치적인 행위와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구분
-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선거중립'에 보다 방점
 -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적 요청, 입법목적 내지 공익의 중대한 의미와 가치도 균형있게 고려 필요
 - 선례의 의미와 정신을 고려해야 함 (노무현 전 대통령 헌법소원 사건 인용)
 -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하는 점(헌법재판소 2007헌마700 결정)
 - 기존부터 계속 해 왔던 행위 판례이론(2011도9243 판결)은 '대선국면' 이론에 의한 사실인정으로 논증



2) 증거능력 판단의 차이 - 가장 핵심 ☞ 사실인정에 지대한 영향

▣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 부정

- 313조 전문법칙 ☞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 인정되어야
- 315조 당연한 증거능력 부정 ☞ 작성경위 불명, 업무상 작성 불명, 특신정황 불인정

▣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능력 인정

- 315조 2호, 3호에 의한 '당연한 증거능력' 인정
 - 이 사건 파일의 작성자는 김○○임을 알 수 있음
 - 업무상 필요한 이슈와 논지 등을 매일 매일 정리해둔 문서 (지논 파일)
 - 여러 달 동안 트위터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필요한 트위터 계정 등을 그때 그때 모아 정리해둔 문서 (시큐리티 파일)
 - 허위 개연성 적음 ☞ 315조 3호 특신정황도 인정됨

▣ 이 사건 파일의 의미는 사건 전체를 좌우할만큼 큼

- 지논파일 : '이슈와 논지' 다수 포함 ☞ 원세훈의 지시내용 입증
- 시큐리티 파일 : 트위터 계정 다수 포함 ☞ 실제 사이버활동 내용 입증
 - 기존의 트위터에 대한 제한적인 증거인정에 비해,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사이버활동이 입증됨
- '이슈와 논지'(지논파일)와 사이버활동(시큐리티 파일)이 조합됨에 따라,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에 따른 지시와 사이버활동이 체계적으로 입증됨

3)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 판단 차이

▣ 원세훈의 동일한 지시내용을 다르게 파악

- 1심에서는 "선거운동 지시로 볼 만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이라 판시
- 항소심은 같은 글을 '정치개입' 지시뿐 아니라, '선거개입' 지시에도 해당한다고 파악

4) '대선국면' 이론의 도입 (항소심)

- 규범적으로 일정한 국면을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설정함
- 새누리당 대선후보 선출일을 대선국면 구분점으로 설정
- 전체적인 행위를 대선국면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구분하여 분석



- 포괄일죄로 기소된 선거범죄를 대선국면 이전 행위는 모두 (이유)무죄, 대선국면 이후 행위는 모두 유죄로 파악하였음
- 이는 선거운동의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 중 특히 '목적성'과 관련
 - 한편, 이는 기존부터 계속 해 왔던 행위 판례이론(2011도9243 판결)의 해결에도 사용

다. 상고심의 쟁점 예상 (사건)

- ▣ 1심과 2심이 기본적 전제법리가 다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기 보다는, 서로 파악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논리구조를 다르게 취한 것으로 보임
 - 여전히 핵심 법리는 선거운동의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
- ▣ 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일 듯
 -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너무나도 구체적임
 -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항소심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단순히 '전제법리' 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비판
 - 법리 문제를 떠나, 항소심 판결의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구체적임
- ▣ 원세훈 지시 내용에 대한 판단은 다소 애매함
- ▣ 대선국면 이론의 정당성 문제
 - 과연 항소심 재판부가 본 것과 같이, 한쪽 정당 후보자 선출일을 대선국면 시작점으로 볼 수 있을지
 - 1개의 포괄일죄로 기소된 범죄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도양단으로 잘라서 유죄와 무죄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 오히려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유죄 또는 전부 무죄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
- ▣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결국 어느 쪽으로도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작성권자가 확실히 인정되는지, 통상의 업무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특별히 신빙성있는지

원세훈 사건 항소심 판결 분석보고 [요약]

1. 사건진행 개요

■ 제1심 :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7 공직선거법위반 등

- 2014. 9. 11. 판결선고
 - 국정원법위반 유죄,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 2015. 2. 9. 판결선고
 - 국정원법위반 유죄, 공직선거법위반 유죄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법정구속 (상고심 구속만기 : 2015. 10. 8.)

■ 1심 2심 비교표 (사실인정 및 구성요건 해당성 차이)

행위태양	죄명	성질	공소사실	1심	2심	
					8.20. 이전	8.21. 이후
찬반클릭	국정원법	정치+선거	1,214	1,214	1,214	
	공선법	선거	1,057	×	0	1,057
오유 등 인터넷 글게시	국정원법	정치+선거	2,125	2,125	2,125	
	공선법	선거	114	×	13	101
트위터 (트윗, 리트윗)	국정원법	정치+선거	786,698 (계정 1,157)	113,621 (계정 175/1,157)	274,800 (계정 716/1,157)	
	공선법	선거	446,844	×	17,314	136,017

2. 1심 판단의 요지 (공직선거법 한정)

가. 증거능력과 사실인정

■ 425지논.txt(‘지논’), ssecurity.txt(‘시큐리티’)(‘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

- 313조 전문법칙 ☞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 인정되어야
- 315조 당연한 증거능력 부정 ☞ 작성경위 불명, 업무상 작성 불명, 특수정황 불인정

■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 175개(1,157개)

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전제법리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개념

- 어떠한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는 구분되는 개념임(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

■ 기존부터 계속 해 왔던 행위

- 선거 시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특정 정책을 지지·반대하여 온 경우 그 정책이 선거 시기에 선거쟁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 선거운동 : 정치적인 행위 + 주관적 목적의사 선명하게 드러나야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한 재판부의 평가(사실의 인정)

■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 (피고인에 불리한 사정)

- 제18대 대통령선거 시기 즈음에도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 성과 등을 홍보하는 글을 작성 및 게시

-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는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글을 작성 및 게시
 - 제18대 대선의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 등과 그들의 소속 정당에 대한 반대·비방 취지의 글도 상당수 포함
- 앞서 인정한 사이버 활동 내용 중 특히 정치적인 부분 참조

■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

- 원세훈의 전부서장회의 발언을 살펴보더라도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의 지시라고 볼 만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
 - 오히려 원세훈이 “대선정국을 맞아 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 “전직원들이 선거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 등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명확히 지시
- 선거운동은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이어야 하는데, 검사가 선거운동의 시작점으로 기소한 2012. 1.경은 제18대 대선 후보자의 윤곽조차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
- 기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국정홍보 취지 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선거운동의 계획성이나 능동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
-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지시로 볼 수 있는 “이슈 및 논지” 에도 선거 관련된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
- 통상적인 선거운동의 경우라면,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검사의 공소사실을 보면 트윗 및 리트윗 건수가 2012. 10. 이후 뚜렷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의 정도 :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 선거운동의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을 인정하기 부족함

3. 항소심 판단의 요지 (공직선거법 한정)

가. 증거능력과 사실인정 판단의 차이

- 425지논.txt(‘지논’), ssecurity.txt(‘시큐리티’)¹⁾²⁾³⁾(‘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

- 313조 전문법칙 ☞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 인정되어야 하므로, 법정에서 진정성립 인정된 바 없어서 증거능력 부정 (1심 판단과 동일)
- 315조 2호, 3호에 의한 ‘당연한 증거능력’ 인정
 - 기록에 의한 각종 증거(김○○의 진술, 김○○의 이메일 및 첨부 파일 활용 방법, 김○○ 작성 다른 이메일 등과 비교, 김○○만이 알 수 있는 정보의 기재 등) ☞ 이 사건 파일의 작성자는 김○○임을 알 수 있음
 - 문서 작성의 계기 : 업무수행
 - 업무 관련성에 관한 김○○의 진술, ‘이슈와 논지’의 전달 체계 및 업무에서 차지하는 기능,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와 지침의 기재, 장기간 작성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문서를 작성해온 정황 ☞ 업무상 필요한 이슈와 논지 등을 매일 매일 정리해둔 문서 (지논 파일)
 - 업무 수행 방법에 관한 핵심 정보의 기재, 업무매뉴얼의 내용과 일치하는 활동 내역의 기재, 장기간 작성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문서를 작성해온 정황 ☞ 여러 달 동안 트위터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필요한

1) 김○○(심리전단 직원) 명의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첨부파일 작성여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2) 지논 파일 : ‘논지’의 앞뒤 글자를 바꾸어 ‘지논’파일로 명명한 것으로 보임. 961KB의 텍스트 파일로서 출력물은 A4용지 420여 장 분량. 주로 국정원(원세훈)의 ‘이슈와 논지’가 날짜별로 기재되어 있음. 트위터의 계정 관리법도 들어 있음

3) 시큐리티 파일 : 영어단어 ‘security’ 앞에 s를 하나 더 붙인 형태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 파일. 출력물은 A4용지 19장 분량. 심리전단 직원들 성명 앞 두 글자와 함께 트위터 계정이 나열되어 있음

트위터 계정 등을 그때 그때 모아서 정리해둔 문서 (시큐리티 파일)

- 보안유지 및 비밀엄수 당부 기재, 국정원의 보안성, 형식 자체가 타인 보고용이 아니라 자기 메모 형식, 기초적 정보의 중요성, 개인적 경조사 일정도 일부 포함 ☞ 허위 개연성 적음 ☞ 315조 3호 특신정황도 인정됨

■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 716인정/1,157**

- 1심 : 175개 계정만 인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 계정만 인정)
- 항소심 : 716개 계정을 인정 (사실상 검사가 지목한 모든 계정을 인정)
- 트위터 계정을 인정함에 따라 선거 관련 글의 인정갯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 약 13만건 이상 인정

■ **원세훈의 지시 내용의 해석**

- 항소심은 지시내용을 ‘선거개입’ 지시에도 해당한다고 파악함
- 1심 “선거운동 지시로 볼 만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 판시
- (예시-동일한 지시내용)

순번	일자	발언 요지	비고 (관련 선거일정)
12	2012. 6. 15.	최근 중북 논란이 불거진 틈을 타 북한은 우리 사회 분열을 부추기고 노골적으로 대선 개입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확실하게 대처해야 할 것임. 또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뿐 아니라 국내 중북좌파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 그 동조세력들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임. 중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제 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존재의미를 찾아야 할 것임	위와 같음

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 유죄 인정

1) 전제한 법리 : 논리구조가 1심과는 다소 다름

■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 국가기관이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사용하여 정치적 세력 간

의 자유경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됨(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 이러한 헌법적 요청 고려하면, 형벌조항의 확장 해석을 경계하는 한편으로 이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내지 공익의 중대한 의미와 가치도 균형있게 고려 필요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개념 (동일)**

- 어떠한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 **기존부터 계속 해 왔던 행위 판례이론 ➡ 법리의 전제에서 사용하는 대신 '대선국면'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인정됨을 논증함 (후술)**

■ **선례의 의미와 정신을 고려해야 함**

- 기자회견 과정에서 주로 야당의 유력 후보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정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비판하였으며 자신의 출신당 후보자를 지지하겠다는 적극적인 취지의 발언
-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⁴⁾)

2) 사실관계의 인정과 판단

■ **행위의 능동성 및 계획성**

- 사이버활동이 이루어진 과정이 체계적임

4)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관위에 대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취소심판 기각 사건

- (예시) 안철수 후보 비방 이슈와 논지 (지논 파일 인정) ☞ 같은 날부터 3일간 이슈와 논지와 동일한 내용의 트윗 글 363회 게시(시큐리티 파일 인정)

- 전파가능성 높은 사이버활동 방법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이용

- (예시) 구체적인 사이버활동 방법이 기재 (지논 파일 인정)
- 팔로워 증대를 위한 노력 및 보고 (시큐리티 파일 인정)

■ **낙선을 위한 행위로서의 목적성**

- 시기별 사이버 활동의 내용 및 규모 변화

- 2012. 1.부터 6.까지는 정치글이 선거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음
- 7월부터 비중이 역전되어 선거글이 정치글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

- 2012. 8. 20.은 대선국면 도입시기로 판단될 수 있음

-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확정
-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특정 후보자의 존재와 이를 인식한 행위’를 선거운동 개념 성립의 전제
- 유력한 대통령 후보 예정자 중 한 사람이라도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됨으로써 선거경쟁구도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시점

- 2012. 8. 20. 이전 선거글은 주로 안철수에 대한 비난과 반대

- 2012. 8. 21. 이후 선거글은 안철수, 문재인, 민주당, 이정희, 통진당 반대

-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 및 의혹 제기, 복지 문제 등 주요 대선공약 비판, 후보 단일화 과정 비판 등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
- ① 안철수 후보 반대 : 자질 부족 및 각종 의혹 제기, 후보 단일화 비판, 모호한 입장표명 비판, 이념성향 비판, 측근 비판, 단순 비방
- ② 문재인 후보, 민주당 반대 : 각종 의혹 제기, 대선 공약 비판, 후보 단

일화 비판, 이념성향 비판, 前 정권 관련 비판, 민주당 인사들 비판, 단순 비방

- ③ 이정희 후보, 통진당 반대 : 부정경선 등 비판, 대선 TV토론 관련 비판, 단순 비방

- ④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지지 : 자질 긍정 평가, 박정희 대통령 옹호, 인혁당 등과거 논란 해명, 각계 지지 선언 홍보

● 다수의 유형별 트윗 글 사례 인정

- 안철수 후보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반대, 이정희 후보 통진당 반대
-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지지

● 글 내용과 게시시점의 정치적 연관성 인정됨

- (다수 예시 중 하나) 2012. 11. 23. 안철수 후보 사퇴 후 - 안철수 반대 트윗 현저히 줄어들고, 반대로 민주당 반대 글 현저히 증가

■ 2012. 8. 20. 대선국면을 전후한 행위의 평가

● 대선국면의 설정

● 대선국면 이전의 활동 평가

- 유력 정치인 및 특정 정당에 대한 일상적 관심의 연장선에서 정치인이나 정당으로의 역량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에 초점
- 정치글과 비교시 선거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고 절대적인 숫자도 적음

● 대선국면 이후의 활동 평가 ☞ 선거운동의 목적성과 범의 인정 가능

-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대선국면이 시작되었다고 인식될 수 있는 시점
- 국정원으로서, 적어도 위 기간 동안만큼은 선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가치와 비중을 보다 무겁게 인식
- 이전과는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선거 관련 사이버 활동의 규모를 증대

- 구체적인 활동 내용 역시 후보자 등의 동선과 활동, 당시 나타난 중요 선 거쟁점 등에 정확하게 대응

▣ '정치적 중립, 선거 불개입' 지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아래와 같은 발언 자체는 인정
 - 원세훈이 “대선정국을 맞아 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 “전직원들이 선거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 등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수 차례 지시
- 그러나 위와 같은 지시는,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을 하지 말라는 데 방점을 둔 것이라기보다 대선 정국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이 외부에 드러나 문제 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하라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
 - 표현 자체가 불분명
 - 사이버 활동을 독려하는 발언 또는 지시를 같은 시기에 함
 - 원론적 당부와 구체적 업무지시의 괴리로 직원들의 인식에도 혼란

4. 항소심 양형의 이유

▣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평가

- 헌법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 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한 것
-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평등한 자유경쟁기회를 침해
- 왜곡 및 침해의 정도를 두고 정치 및 선거에 관여한 모든 정당과 정치인,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에 의견 대립을 야기할 가능성

▣ 엄정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 강조

5. 참고법리 : 디지털 파일의 증거능력

가. 전문법칙의 문제 (이 사건 판단과는 무관-1심, 2심 부정됨)

■ 쟁점

-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범위
- 전문법칙 적용시 ‘작성자의 진술’ 외에 다른 방법(IP 주소 등)에 의하여 진정성립 인정이 가능한지

■ 전문법칙 적용의 기준

- 그 내용 (문자정보의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그 내용이 적시하는 사실을 요증사실로 하는 경우 : 전문법칙 적용
- 그 문건의 존재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 : 전문법칙 적용대상 아님.
 - 증거물로서 검증의 대상이 됨

■ 전문법칙 적용시 증거능력 인정방법

-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사용 가능
- 314조에 의한 예외(기타방법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인정되지 않음

나. 315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증거의 문제 (이 사건 쟁점)

■ 전문법칙과 31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임

■ 판례상 인정기준 (2012도16001 판결 등)

다만 ‘공소의 1 USB 문건’ 중 선거운동원들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표시한 부분은, 피고인 1이 선거운동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원들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그때그때 일상적, 계속적, 기계적으로 확인하여 작성한 출결부를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출결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에 해당하고, ‘공소의 1 USB 문건’ 중 선거운동원들이 실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표시한 부분도 위 출결부의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컴퓨터파일로 옮겨 적는 형태로 작성된 것임이 인정될 그 경우 역시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6. 종합 검토 (형사심의관)

가. 심각성

- 이 사건에서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원세훈에 대한 비난) 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 2심이 독립적인 증거조사를 광범위하게 한 것은 아님 👁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르게 판단하였음
- 대법원의 구성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된다는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음

나. 1심과 2심의 판단차이의 핵심

1) 전제 법리의 차이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

- 선거운동의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는 공통적으로 인용하고 있음
-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인정의 엄격성에 보다 치중
 - 선거 영향 미치는 행위와 구분되는 개념(2006도9392 판결) 강조
 - 기존부터 계속 해 왔던 행위 판례이론(2011도9243 판결) 적극사용
 - 선거 시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특정 정책을 지지·반대하여 온 경우 그 정책이 선거 시기에 선거쟁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위 판례의 사안) :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 종전(2002년경)부터 하던 단체 ☞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무상급식이 선거쟁점으로 부각 ☞ 종전부터 해오던 무상급식 정책지지 행사는 선거운동 아님 (다만, 특정 정

당 또는 후보 언급한 행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음)

- 정치적인 행위와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구분

▣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선거중립’에 보다 방점**

-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적 요청, 입법목적 내지 공익의 중대한 의미와 가치도 균형있게 고려 필요
- 선례의 의미와 정신을 고려해야 함 (노무현 전 대통령 헌법소원 사건 인용)
 -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하는 점(헌법재판소 2007헌마700 결정)
- 기존부터 계속 해 왔던 행위 판례이론(2011도9243 판결)은 ‘대선국면’ 이론에 의한 사실인정으로 논증

2) 증거능력 판단의 차이 - 가장 핵심 ☞ 사실인정에 지대한 영향

▣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 부정**

- 313조 전문법칙 ☞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 인정되어야
- 315조 당연한 증거능력 부정 ☞ 작성경위 불명, 업무상 작성 불명, 특신정황 불인정

▣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능력 인정**

- 315조 2호, 3호에 의한 ‘당연한 증거능력’ 인정
 - 이 사건 파일의 작성자는 김○○임을 알 수 있음
 - 업무상 필요한 이슈와 논지 등을 매일 매일 정리해둔 문서 (지논 파일)
 - 여러 달 동안 트위터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필요한 트위터 계정 등을 그때 그때 모아서 정리해둔 문서 (시큐리티 파일)
 - 허위 개연성 적음 ☞ 315조 3호 특신정황도 인정됨

▣ 이 사건 파일의 의미는 사건 전체를 좌우할만큼 큼

- 지논파일 : ‘이슈와 논지’ 다수 포함 ☞ 원세훈의 지시내용 입증
- 시큐리티 파일 : 트위터 계정 다수 포함 ☞ 실제 사이버활동 내용 입증
 - 기존의 트위터에 대한 제한적인 증거인정에 비해,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사이버활동이 입증됨
- ‘이슈와 논지’ (지논파일)와 사이버활동(시큐리티 파일)이 조합됨에 따라,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에 따른 지시와 사이버활동이 체계적으로 입증됨

3)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 판단 차이

▣ 원세훈의 동일한 지시내용을 다르게 파악

- 1심에서는 “선거운동 지시로 볼 만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이라 판시
- 항소심은 같은 글을 ‘정치개입’ 지시뿐 아니라, ‘선거개입’ 지시에도 해당한다고 파악

4) ‘대선국면’ 이론의 도입 (항소심)

- 규범적으로 일정한 국면을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설정함
- 새누리당 대선후보 선출일을 대선국면 구분점으로 설정
- 전체적인 행위를 대선국면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구분하여 분석
- 포괄일죄로 기소된 선거범죄를 대선국면 이전 행위는 모두 (이유)무죄, 대선국면 이후 행위는 모두 유죄로 파악하였음
- 이는 선거운동의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 중 특히 ‘목적성’ 과 관련
 - 한편, 이는 기존부터 계속 해 왔던 행위 판례이론(2011도9243 판결)의 해결

에도 사용

다. 상고심의 쟁점 예상 (사건)

▣ 1심과 2심이 기본적 전제법리가 다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기 보다는, 서로 파악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논리구조를 다르게 취한 것으로 보임

- 여전히 핵심 법리는 선거운동의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

▣ 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일 듯

-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너무나도 구체적임
-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항소심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단순히 ‘전제법리’ 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는 비판
- 법리 문제를 떠나, 항소심 판결의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구체적임

▣ 원세훈 지시 내용에 대한 판단은 다소 애매함

▣ 대선국면 이론의 정당성 문제

- 과연 항소심 재판부가 본 것과 같이, 한쪽 정당 후보자 선출일을 대선 국면 시작점으로 볼 수 있을지
- 1개의 포괄일죄로 기소된 범죄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도양단으로 잘라서 유죄와 무죄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 오히려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유죄 또는 전부 무죄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결국 어느 쪽으로도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작성권자 인정여부, 통상업무 따라 작성 여부, 특별 신빙 정황 여부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검토계획

2015. 9. 18.

윤리감사관실

1. 검토배경

- 법관의 재판상 판단은 법관의 독립상 일반적으로 사법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받아들여져 왔음
- 그러나 법관의 재판상 판단이 문제가 되어 국민과 여론의 비난과 비판을 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환형유치에 있어 벌금액에 따라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는 개정 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법정 하한보다 낮은 유치기간을 정한 사례 [남○○ 부장판사(○○기)]
-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논란이 된 사례 [김○○ 부장판사(○○기), 이○○ 前 부장판사(○○기)]
- 뇌물수수 사건에서 필요적으로 병과해야 하는 벌금형을 누락하여 국감에서 지적된 사례 [2014년 광주지법 국감]

- 잘못된 재판결과는 사법부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임 ➡ 직무감독을 행할 필요성 자체는 있음
 - ①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음(상소절차, 청구이의 절차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
 - ② 당사자간의 형평과 법적 안정성에 해를 끼칠 수 있음
 - ③ 특히 고의·악의적인 명백한 오판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고 사법부의 신뢰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게 됨
- 다만, 재판의 독립이라는 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재판 판단에 대한 직무감독의 가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재판과 관련된 사법행정권(직무감독권)의 한계 검토 필요
 - “재판의 독립” 원칙에 배치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 검토실시에 앞서 검토방향을 먼저 설정하고자 함



2. 사법행정권 및 그 한계

가. 사법행정권의 의의

- 사법재판권의 행사나 재판제도를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행정 작용¹⁾
 - 사법행정권에는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권 및 법관의 직무상 의무 준수와 그 위반에 대한 감독, 시정 관련 권한 포함
- 사법행정권자의 지휘·감독권
 - 법원조직법 제29조 제3항 등은 “(소속기관장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직무상 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법원조직법
제29조(지방법원장)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법관도 공무원으로서 사법행정권자인 소속기관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함 ➡ “서면경고”와 “구두경고”(주의촉구)도 직무상 명령의 하나임
 - 법관에 대한 서면경고와 구두경고는 (징계불문 시의 서면경고 외에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음
- 직무상 명령은 그 본질상 위와 같은 서면경고와 구두경고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나. 법관의 독립에 관한 사법행정권의 행사 범위

■ 사법행정상의 감독권의 한계

1) 김○○, 헌법학개론 제19전정신판, 1568; 권○○, 헌법학원론 개정판, 1066; 성○○, 헌법학 제7판, 1038면



- **법관 본연의 직무범위인 재판에는 사법행정권이 미치는 않음** ➡ 헌법 제103조 법관의 직무상 독립의 규정으로부터 나오는 원칙
 - 사법행정권도 특정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권 행사에 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가짐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윤리강령
전문(일부)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제1조 (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 **재판 과정에서의 오류는 심급제도를 통해 시정됨이 원칙**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 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재판사항의 범위**

- **의미** ➡ 법관이 재판의 형식으로 행하는 모든 작용
 -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권리로서 고유의 쟁송뿐만 아니라 광의로 재판의 형식으로써 행하여지는 절차 등을 포함. 비송사건, 가정심



판, 소년심판, 집행사건 등도 이에 속하는 것

법원조직법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 재판사항에 포함되는 내용 ➡ 재판의 내용, 재판의 절차 등 재판과 직접 관계 있는 모든 행위
 - 재판이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의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결코 이에 한정된 것만은 아님

▣ 직무감독권 범위 내에 있는 재판사항

- 재판의 독립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님
 -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로서, 법관이 법과 양심 이외의 일체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판단’한다는 의미
- 전국법관 워크숍에서도 절차규정에 명백히 위반된 재판진행 방식에 대한 주의 환기, 명백한 실수에 대한 주의촉구 등은 사법행정상 감독권의 범위 내라는 점에 대해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음
 - 2009. 4. 20.과 21.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전국법관 워크숍에서 사법행정권의 한계에 대하여 논의

▣ 외국의 사례

- 독일의 경우, 연방법원의 판결례에 의하면 법관의 직무행위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행위”와 관계되는 모든 직무감독 조치는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를 두고 있음

[핵심영역]

① 재판, ② 재판준비 및 실행에 이바지하는 모든 행동들, ③ 심리 및 재판의 과정 등

[예외]

핵심영역의 경우에도 ‘명백한 실책’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감독조치가 가능

- 폐지된 법률을 적용한 경우
- 법원조직법상 변호사에 대해 질서유지수단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음에도 소송지휘에



불응하는 변호사를 법정경위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끌어내도록 한 행위 등

● 일본의 경우에도 사법행정 감독권이 배제되는 '재판관의 재판권'은 어디까지나 재판의 '내용'임

- 재판을 행함에 있어 취하여야 할 태도나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는 사법행정의 감독권이 미친다고 봄
-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에 있어서도 **명백한 법령위반, 명백한 오판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행정 감독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봄**

● 미국의 경우도 재판에 관한 사항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함

- ① 뉴욕주에서는 법관이 명백히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판결에 관한 조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② 뉴저지주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함
법관의 재판상 잘못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것이 충분히 신중하고 능력 있는 법관을 기준으로 할 때 **“명백한” 실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분명한 증거가 있으며, 아울러 법관의 잘못이 **‘터무니없는 것(무능)’**이거나 **‘악의적’**이거나 반복된 잘못이어서 그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를 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결국,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는 직무감독의 행사가 가능함**

다. [참고] 재판사항 관련 물의사례 및 그 조치내용

■ 김○○ 판사(○○기)

- 국선변호인선정 취소결정 소급작성 ➡ 감봉 4월 징계(2014년)

■ 박○○ 판사(○○기)

- 경매사건의 기록검토를 소홀히 하여 유치권 신고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있음’ 표시 후 경매 진행 ➡ 서면경고(2005년)

■ 김○○ 부장판사(○○기)



● 합의서 제출 간과 판결 ➡ 조치 없음(2007년)

-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반성문으로 오인하는 등으로) 문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사안

■ 박○○ 판사(○○기)

● 법정구속 관련 고지절차 등 위반 ➡ 구두경고(2007년)

- 피고인을 법정구속을 하면서 법정구속 됨을 고지하지 않고 구속사유 고지나 변명의 기회 제공 등의 절차도 취하지 않았으며, 검사가 법정에 있음에도 검사를 통해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실무관에게 영장을 주고 그대로 퇴정해버려 피고인이 도주

■ 김○○ 판사(○○기)

●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착오로 영장 발부 ➡ 조치 없음(2000년)

- 영장당직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해당 법관에 대해서는 인사반영 조치(영동지원 전보)

■ 김○○ 부장판사(○○기)

● 구속기간이 도과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소급하여 발부 ➡ 서면경고(2006년)

■ 이○○ 부장판사(○○기)

● 사건처리 지연 ➡ 법원장과 수석부장이 수차 권고, 문책성 인사로 ○○지법 전보(2010년)

■ 김○○ 판사(○○기)

●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실질심문기일에 불출석 ➡ 서면경고(2011년)

■ 기타 유형별 사례

● 구속영장 반환 요구를 하지 않아 불법구금 논란 ➡ 모두 구두경고

정○○ 판사(○○기, 2009. 6.경), 염○○ 부장판사(○○기, 언론보도됨, 2007. 8. 경), 조○○ 판사(○○기, 2009. 1.경)



- 판결등록 지연(판결원본에 의하지 아니한 선고에 기인한 경우 포함) ➡ 서면 경고 또는 주의촉구
- 판결등록 오류 ➡ 서면 경고, 주의촉구(주된 조치), 또는 조치 없음
- 조서작성 오류 ➡ 구두 경고 또는 조치 없음

- 조○○ 부장판사(○○기) : 피고인 퇴정하에 증인신문을 한 후 피고인에게 증언 요지를 고지하지 않으면서 공판조서에 그 이유를 '증언이 일관성이 없어 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변호인 열람·등사) 위 증언요지 불고지 이유 부분을 '증언이 난삽하고 복잡하여 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판조서에 수정 기재함(변호인 열람·등사) ➡ 상고심에서 공판조서 대체의 위법 여부도 판단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적인 비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 조치하지 아니함(2011년)
- 김○○ 부장판사(○○기) : 감정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 조서에는 감정인이 출석하여 선서한 후 감정한 것으로 조서를 임의로 작성 ➡ 수사기관 고발되어 기소유예, 별도의 내부 조치 없음 (2005년)
- 김○○ 부장판사(○○기) : 잘못 작성된 조정조서가 양측 대리인과 피고 본인에게도 송달된 상태에서 원고대리인의 경정신청을 받고 피고대리인에게만 확인한 후 기존 조정조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송달 ➡ 불문(2001년)
- 정○○ 판사 (○○기) : 검사의 증인 신청과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재판장이 불허하였음에도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검사가 구형을 하지 않았음에도 구형을 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기회를 준 것처럼 기재 ➡ 별도의 내부 조치 없음(2008년)
- 이○○ 판사(○○기) : 변론기일이 변경되었음에도 사무분담 변경 前 재판장이 기일변경명령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 재판장이 착오 입력된 사건진행내역에 기초하여 만연히 기일진행 변론조서 작성을 지시하고 전임재판장의 도장을 날인 ➡ 구두 경고(2012년)

3. 재판결과(오판)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의 예상되는 영향

▣ 긍정적 영향

- 튀는 판결을 최소화에 기여하여 법적 안정성,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국회와 언론이 단골로 지적하는 사례의 발생을 예방



- 재판받는 당사자들이 권리관계 예측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
 - ▶ 각종 거래에 있어 위험 비용의 감소 가능

- 재판하는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경우 제기될 수 있는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복불복에 의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함
- ‘법관이 누구인지’라는 요소로 인해 불필요한 절차 비용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현행 법령에 반하는 판결 등 사법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판결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부정적 영향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사법행정권의 개입이라는 이유로 법관들에 의한 대규모 반발도 발생 가능

- ① 직무감독의 대상에 대한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 ② 직무감독 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 나아가 직무감독이 가능한 범주의 잘못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²⁾에 대한 제재만으로도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논란 제기 가능
- ③ 정당한 직무감독권 행사를 악의적으로 왜곡·선전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 법원에 대한 진정·청원, 국민감사청구, 인권위 등 외부기관에 대한 진정, 오판을 이유로 법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증가 가능

- 확립된 판례에 따른 증거능력 및 가치 판단을 잘못된 경우에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외부에 보일 경우, 상당한 수의 재판에서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들이 심급에 따른 사법시스템 외에서 만족을 얻거나 판사를 제재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할 것임

- 진정·청원 등의 숫자 증가와 그로 인한 사법불신 증대의 외관 형성이 발생할 수 있음

- 종래 심급제에 의하여 교정되는 “잘못”들이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해 외부에 드러날 경우, 그 객관적 숫자나 내용에 따라 오히려 법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2) 특히 고의나 악의,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과 같은 ‘내심의 의사’를 요건으로 할 경우 불분명성은 더욱 증가할 수 있음



- 법관을 위축시켜 법관으로 하여금 소극적·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음
 - ▶ 법관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판결을 하기 곤란해질 수 있음

4. 향후 검토방향

■ 검토계획 개요



■ [1~2단계] "명백한 잘못"의 범주의 정리가 무엇보다도 필요

- 1단계 : 오판의 가능한 유형을 수집하여 정리 ▶ 재판연구관실의 협조 필요
 - 재판연구관실은 다양한 유형의 오판 사례를 알고 있을 것임
 - 다만, 아래와 같은 전산상의 파기환송 분석유형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아니함 ▶ 설문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파악이 필요

[재판연구관실의 파기사유 전산분석 유형]

유 형	판례 변경	새로운 법리선언	소송요건 상실	판례 위반	판단 누락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기타 법리오해	양형 부당
--------	----------	-------------	------------	----------	----------	------------	----------	------------	----------

- 한편, 연구관실의 협조를 받아 오판 사례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장단점의 비교교량 필요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연한 추측이나 피상적인 자료수집에서 벗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심도있고 다양한 사례를 수집할 수 있음 <p>[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결과에 관한 사법행정권의 행사 검토 사실이 검토 단계에서 부터 외부에 유출될 수 있음

- 2단계 : 유형별로 "명백한 잘못"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외국의 사례도 비교 검토
 - 유형에 따른 잘못의 발생 원인 등을 살펴보고 그것이 직무감독이 가능한 "명백한 잘못"에 포함될 수 있을지를 검토함



- 재판결과에 있어서의 ‘오판’만을 검토할 경우 앞서 살펴본 부정적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음 ➡ 기존에 큰 반발이 일지 않았던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잘못’도 함께 검토하여 반발의 가능성을 ‘완화’할 필요 있음
- 외국에서 “명백한 잘못”으로 바라보는 기준도 참고하여 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설득력을 높임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대표적으로 살펴봄

[참고] “판례위반”을 명백한 잘못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 검토 필요

- 판례의 의미와 효력의 검토 필요
 - 판례의 구속력 존부 및 그 범위
 - 대륙법계와 보통법계의 비교
 - 대법원 판례와 그 밖의 심급의 판례의 이동(異同) 등
- 판례 위반의 원인이 판례 부지인지, 기존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결과인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 검토 필요
 - 하급심에서 판례 부지 또는 적용 실수로 인한 판례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도 고려 필요

▣ [3단계] “명백한 잘못”의 정도를 검토

- 사소한 잘못까지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경우에 순기능보다는 역효과만 나타날 수 있음
- 유형별로 잘못의 정도를 검토하여 직무감독이 필요한 범주의 유형을 선별함

▣ [4단계] 각 유형별 적절한 직무감독의 유형 검토 필요

- 유형별 잘못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직무감독의 유형을 검토
- 직무감독권의 행사는 단순히 징계청구, 서면경고, 구두경고만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타날 수 있음 ➡ 각 유형에 따라 기존의 직무감독권 행사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적절한 경우가 있는지를 검토

▣ [검토 완료 이후 추가단계] 직무감독이 가능한 재판상 잘못의 유형과 그에 따른 예상조치의 공표 여부 검토

- 기준 공표의 장점
 - 사전 예고 없이 재판에 관하여 직무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취지를 제대로 전달할



틈도 없이 각급 법원 법관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음 ▶ 사전 공표를 통하여 취지에 관한 공감대를 얻을 필요 있음

● 기준 공표의 단점

- ‘재판의 독립’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어 위와 같은 기준 공표 자체로 ‘사법행정권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발이 제기될 수 있음
- 기존에도 ‘명백한 재판 잘못’(주로 진행상 잘못)에 대한 개별적인 사법감독권 행사에 대하여 큰 반발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표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 발생 가능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 경제적 영향 분석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8. 6. 5.

기획조정실



< 요약 >

1. 검토 배경

- 통상임금 관련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공개 변론·생중계 결정
- 경제적 영향을 놓고 각 경제주체가 논란을 거듭함

2.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노동비용에 미치는 영향

가. 각 경제주체의 주장

- 재계: “38조 5,509억 원”
- 노동계: “5조 7,456억 원”
- 국책 연구소: “14조 6,000억 원~21조 9,000억 원”

나. 검토

- 편차가 심한 1차적 원인 ⇨ 산출한 노동비용의 명목이 다름
 - 재계: 장래의 노동비용 포함, 간접 노동비용 포함
 - 노동계: 기왕의 직접 노동비용에 국한
 - 하지만 같은 명목의 노동비용을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심함
- 재계의 분석 결과 ⇨ **과대 계상임**
 - 비판①: 모든 근로자의 근속 연수가 3년 이상이라고 가정
 - 비판②: 5인 미만 근무 사업장 근로자들도 모두 포함
 - 비판③: 유리한 기초 통계자료를 활용
- 노동계의 분석 결과 ⇨ **과소 계상임**
 - 비판①: 계산 방식에 오류
 - 비판②: 간접 노동비용과 장래의 노동비용을 고려하지 않음
- 국책 연구소의 분석 결과 ⇨ **비교적 객관적임**
- 현실에 전액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고, **효과는 상당히 축소될 것**



- 변수①: 개인 근로자의 소극적 대응 가능성
- 변수②: 노사 타협·조정 가능성
- 변수③: 기업의 적극적 노동비용 절감 가능성
- 실제 효과를 1/5 수준(4조 원)으로 추산하는 견해도 있음

3. 기타 고용, 분배, 임금 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가. 고용 파급 효과

- ▣ 재계: “37만 2,000개~41만 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
- ▣ 노동계: “연장근로 시간이 줄고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것**”
- ▣ 검토: 모두 **일방적 효과만을 내세우고 있고, 쉽게 예측하기 어려움**

나.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

- ▣ **노동소득분배율 개선 효과**
- ▣ **임금의 양극화 심화**
- ▣ **최저임금의 사실상 감소 효과**

다. 임금 체계에 미치는 영향

- ▣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체계 단순화**
- ▣ **포괄임금제로 전환 촉진**
- ▣ **상여금 체계의 변화**

4. 토론: 사법부의 판단에 경제적 파급효과의 고려 여부

- ▣ 재계: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 “공평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 노동계: “**전혀 고려되지 말아야 한다**”
 - “추가 노동비용은 지난 3년 동안의 체불임금일 뿐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 경제적 영향 분석

2018. 6. 5.

기획조정심의관(鄭)

I. 검토 배경

- 이른바 ‘금아리무진 사건’ 판결 선고 후 통상임금의 범위가 사회적 쟁점화 ⇨ 대법원, 올해 8월에 2건의 통상임금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 5.(목) **변론 기일의 공개·생중계 결정**
-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판단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놓고 **각 경제주체가 논란을 거듭함** ⇨ 주장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 있음

II.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노동비용에 미치는 영향

가. 재계(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 결과¹⁾

- “지난 3년간 직간접 노동비용 + 향후 1년간 직간접 노동비용 = **38조 5,509억 원**”
- 지난 3년간 직간접 노동비용 29조 6,846억 원 + 향후 1년간 직간접 노동비용 8조 8,663억 원

◆ 계산 근거			
구분			추가 부담액
1년치 발생 비용[①]	통상임금 연동 수당	초과근로수당	5조 8,849억 원
		연차유급휴가수당	9,982억 원
		변동 상여금	7,585억 원
	간접 노동비용	퇴직금	5,997억 원
		사회보험료	6,190억 원
		임금채권 보장 부담금	61억 원
	소계		

1) 경총 경제조사본부,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 시 경제적 영향 분석’, 경영계(2013. 5.) 참조.



3년치 소급분[②]	24조 8,000억 원
퇴직급여 충당금 증가액[③]	4조 8,846억 원
판결 후 즉시 발생 비용[②+③]	29조 6,846억 원
판결 후(1. 1. 판결 기준) 당해 발생 비용[①+②+③]	38조 5,509억 원

나. 노동계(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분석 결과²⁾

▣ “지난 3년간 직접 노동비용 = 5조 7,456억 원”

- 지난 3년간 직접 노동비용 = 근로자 1인당 월간 직접 노동비용 × 통상임금 청구 소송 당사자인 근로자 수 × 36개월
- 근로자 1인당 월간 직접 노동비용: 최대 3만 8,553원

◆ 계산 근거				
▶ 2012년 기준 농업 제외 전체 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317만 원의 구성 내역				
구분	정액 급여 (기본급·정기적 수당 등)	초과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특별 급여 (고정 상여금 등)	합계
금액	247만 원	18만 1,000원,	52만 7,000원	317만 원
▶ 고정 상여금 등이 포함된 특별 급여는 정액 급여의 21.3%에 불과 ⇒ 특별 급여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초과 급여의 추가 액은 원래의 초과 급여의 21.3%를 초과할 수 없음				
▶ ∴ 1인당 월간 추가 직접 노동비용의 상한액은 3만 8,553원(= 원래의 초과 급여액 18만 1,000원 × 21.3%)				

- 통상임금 청구 소송 당사자인 근로자 수: 414만 명

◆ 계산 근거			
▶ 2012년 기준 임금 근로자 전체 1,770만 명의 구성 내역			
구분	주 40시간 초과 근로자(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하므로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초과 급여 지급 대상)	주 40시간 이하 근로자	합계
인원	575만 명(32.5%)	1,195만 명(67.5%)	1,770만 명
▶ 주 40시간 초과 근로자 575만 명의 구성 내역			
구분	5인 이상 근무 사업장 근로자(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5인 미만 근무 사업장 근로자	합계
인원	414만 명(72%) ⇒ 통상임금 청구 소송 당사자	161만 명(28%)	575만 명

2) ‘재계 “38조” vs 노동계 “5조”...통상임금 추가 비용 진실은?’, 한겨레(2013. 5. 20.자) 참조.



- 지난 3년간 직접 노동비용: 5조 7,456억 원[= (3만 8,553원 × 414만 명) × 36개월]

다. 국책 연구소(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³⁾

■ “지난 3년간 직간접 노동비용 + 향후 1년간 직간접 노동비용 = 14조 6,000억 원~21조 9,000억 원”

-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과 기타 수당을 포함할 경우 ⇨ 21조 9,000억 원

◆ 계산 근거					
	전체 노동비용	직접 노동비용		간접 노동비용	
		초과 급여	연차수당	퇴직급여충당금	사회보험료
향후 1년	6조 1,182억 원	4조 70억 원	1조 1,699억 원	4,314억 원	5,099억 원
지난 3년	15조 8,279억 원	8조 9,846억 원	2조 5,757억 원	3조 1,265억 원	1조 1,411억 원
합계	21조 9,461억 원	12조 9,916억 원	3조 7,456억 원	3조 5,579억 원	1조 6,510억 원

-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만을 포함할 경우 ⇨ 14조 6,000억 원

◆ 계산 근거					
	전체 노동비용	직접 노동비용		간접 노동비용	
		초과 급여	연차수당	퇴직급여충당금	사회보험료
향후 1년	4조 551억 원	2조 6,614억 원	7,696억 원	2,859억 원	3,382억 원
지난 3년	10조 5,492억 원	5조 9,910억 원	1조 7,051억 원	2조 928억 원	7,602억 원
합계	14조 6,042억 원	8조 6,523억 원	2조 4,747억 원	2조 3,788억 원	1조 984억 원

라. 검토

1) 각 분석 결과의 전체적 비교

■ 서로 **편차가 심함**

- 특히 재계와 노동계의 분석 결과는 그 차이가 6.8배에 달함

3) 정○○(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노동비용 변화’, 노동리뷰(2013. 8.) 참조.



(단위: 조 원)

		전체 노동비용	직접 노동비용			간접 노동비용	
			초과 급여	연차수당	변동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사회보험료
재계	향후 1년	8.8	5.9	1.0	0.8	0.6	0.6
	지난 3년	29.7	17.7	3.0	2.3	4.9	1.8
	합계	38.5	23.6	4	3.1	5.5	2.4
노동계	향후 1년	-	-	-	-	-	-
	지난 3년	-	5.7	-	-	-	-
	합계	5.7	5.7	-	-	-	-
국책 연구소	향후 1년	4.1~6.1	2.7~4.0	0.8~1.2	-	0.3~0.4	0.3~0.5
	지난 3년	10.5~15.8	6.0~9.0	1.7~2.6	-	2.1~3.1	0.8~1.1
	합계	14.6~21.9	8.7~13.0	2.5~3.8	-	2.4~3.5	1.1~1.6

▣ **편차 발생의 1차적 원인** ⇨ 산출한 노동비용의 명목이 다름

● **재계: 장래의 노동비용 포함, 간접 노동비용 포함**

- “지난 3년간 직간접 노동비용 + 향후 1년간 직간접 노동비용 = 38조 5,509억 원”

● **노동계: 기왕의 직접 노동비용에 국한**

- “지난 3년간 직접 노동비용 = 5조 7,456억 원”

● 하지만 문제는, 이를 감안하여 같은 명목의 노동비용을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심하다는 것임

- “지난 3년간 직접 노동비용” 만 추출하여 비교할 경우에도 ⇨ 재계 17조 7,000억 원 ⇨ 노동계 5조 7,000억 원 ⇨ 국책 연구소 6조 원~9조 원

2) 각 분석 결과에 대한 개별적 검토

▣ **재계의 분석 결과** ⇨ **과대 계상**임

● **비판①: 모든 근로자의 근속 연수가 3년 이상이라는 가정은 비현실적**임

- 근속 연수가 3년에 못 미치는 근로자의 수도 상당함

● **비판②: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근무 사업장 근로자들도 모두 포함시키고 똑같이**



노동비용이 증가한다고 가정한 것도 역시 비현실적임

- 2012년 기준 전체 근로자 12,447,000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099,000명 ⇨ 25%에 달함

- 비판③: 결과값이 크게 나오는 데에 유리한 기초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결과를 부풀림

- 추가 노동비용이 발생하는 노동자의 수 산정에 2010년 통계 수치(1,334만 명)를 사용 ⇨ 한국노동연구원은 2012년 통계 수치(1,244만 명)를 사용
- 고정 상여금 산정에도 2008년 통계 수치를 사용 ⇨ 한국노동연구원은 2012년 통계 수치를 사용

■ 노동계의 분석 결과 ⇨ 과소 계상임

- 비판①: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음(보고자 사건)

- 근로자 1인당 월간 직접 노동비용을 전체 근로자 평균값을 사용하여 계산한 후, 이 값에 통상임금 청구 소송 당사자인 근로자 수를 곱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그와 같이 계산할 경우 노동비용의 1인당 단가는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평균값인데, 이에 일부 근로자 수만을 곱하게 되므로 실제보다 과소평가됨

◆ 사안의 단순화를 통한 노동계의 계산 방식 오류 설명

☞ 10명의 근로자 중 5명의 근로자만이 초과근로를 하고 초과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각각 4만 원씩(전체 합계 20만 원)의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사안을 단순화할 경우

⇨ 노동계의 계산 방식은 “10명의 근로자 전체가 평균 2만 원의 초과근로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5명이므로, 10만 원만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식임(실제로는 5명이 4만원씩 2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함)

- 비판②: 간접 노동비용과 장래의 노동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일부 노동비용만을 고려한 것

- 경제적 영향의 전체 모습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간접 노동비용과 장래의 노동비용도 고려하여야 함

■ 국책 연구소(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 ⇨ 비교적 객관적임(보



고자 사건)

- 내용 자체로 큰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며, 최신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보임
- 결과에 있어서도 과대 계상된 재계의 분석 결과와 과소 계상된 노동계의 분석 결과의 중간 범위에 위치함
- 기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나누어 결과를 산출함 ⇨ 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해당 급여의 명목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고려함

3) 각 분석 결과의 전반적인 실현 가능성 검토

▣ 설령 분석 결과가 걱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 전액 반영되는 않을 것임** ⇨ **파급효과는 상당히 축소된 형태로 나타날 것임**⁴⁾

- 위 분석 결과들은 계산의 편의 등의 이유로 '다른 조건에 변함이 없다(ceteris paribus)'라는 가정 아래 계산된 것들이나,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기왕 노동비용에 관한 변수①: 개인 근로자의 소극적 대응 가능성
 - 개인 근로자, 그리고 조직력이 약한 노동조합에 속한 근로자는 상당한 시간과 소송비용을 감당하여야 하는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기왕 노동비용에 관한 변수②: 노사 타협·조정 가능성
 - 어느 정도 조직력을 갖춘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측과 타협 내지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사측에서도 이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노동비용보다 다소 작은 금액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음

4) 김○○(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통상임금 산정 방식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과 대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3. 6.) 참조.



- 장래 노동비용에 관한 변수: 기업의 적극적 노동비용 절감 가능성
 - 기업은 장래의 노동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를 줄이고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의 대응을 강구할 것이고, 실제로 일정 부분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임
- 극단적으로는 실제로 반영될 효과를 국책 연구소 추정치의 1/5 수준 (4조 원) 정도로 추산하기도 함⁵⁾(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견해: 친노동계 성향의 연구기관임)
 -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 파견’ 사건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등 대기업은 종래의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는 것 등을 사례로 들면서, 판결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근거로 듦

III. 기타 고용, 분배, 임금 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가. 고용 파급 효과

1)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

- ▣ **재계: “추가 노동비용 38조 5,509억 원으로 말미암아 37만 2,000개~41만 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⁶⁾**
 - 37만 2,000개~41만 8,000개의 일자리 감소는 전체 고용률을 1% 하락시키는 규모임
 - 또한 매년 발생하는 향후 추가비용 8조 8,663억 원은 해마다 8만 5,000개~9만 6,000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규모임
- ▣ **성균관대 교수 조○○: “4개 산업(철강, 전자, 자동차, 조선)의 경우 2만 7,446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있음”⁷⁾**
 - 수출 감소로 인한 직간접 고용 감소 효과가 1만 7,631명, 수입 증대

5) (주 4) 참조.

6) (주 1) 참조.

7) 조○○(성균관대학교 교수), ‘통상임금 판례 변화가 실물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법경제학회 발표문(2013. 6.) 참조.



에 따른 직간접 고용 감소 효과가 254명, 투자 감축에 따른 직간접 고용 감소 효과가 9,561명에 이릅니다.

2)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

■ 노동계: “대기업의 장시간 노동 유인이 줄면 연장근로 시간이 줄고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것”⁸⁾

- 기업은 연장근로를 줄이고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등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대응 방식을 강구할 것 ⇨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고용이 창출될 수밖에 없음

◆ 초과근로 제한이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					
	탈법적 초과근로			초과근로 일소 시 변화	
	수(천 명)	비율(%)	초과근로 시간 합계 (천 시간)	추가 고용 (천 명)	근로시간 (시간)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3,799	21.8	36,014	693	주 41.5
주 48시간 초과 근로자	5,393	31.0	54,946	1,145	주 40.4

3) 검토

■ 양측 주장 모두 복합적인 경제현상을 종합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방적 효과만을 내세우고 있음

- 재계의 주장: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 노동비용 상승 ⇨ 일자리 감소”라는 단순하고 일방적인 프로세스만 제시
- 노동계의 주장: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 노동비용 상승 ⇨ 비용 절감을 위한 연장근로 제한 ⇨ 일자리 증대”라는 단순하고 일방적인 프로세스만 제시

■ 하지만 정(正)의 효과와 부(負)의 효과가 복잡다단하게 충돌하는 문제이므로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움

8) (주 4) 참조.



나.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

■ 노동소득분배율 개선 효과

- 만약 국책 연구소(한국노동연구원) 추정대로 향후 1년 동안 피용자 보수 총액이 6조 1,182억 원 증가하고 기업·재산 소득이 그만큼 감소한다면 노동소득분배율은 0.7% 개선됨
- 2012년 노동소득분배율 59.7%(피용자 보수 총액 582조 1,340억 원, 기업·재산 소득 386조 4,300억 원,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 ⇨ 60.4%

■ 임금의 양극화 심화

- 대기업·정규직 사업장 근로자 ⇨ 임금 수준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큼
- 소기업·비정규직 사업장 근로자 ⇨ ①통상임금 청구 소송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음, ②대기업·정규직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로 인하여 그들의 추가 노동비용이 전가되어 임금 삭감 내지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최저임금의 사실상 감소 효과

- 최저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포함시키면 한계선상에 있는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임금이 현재보다 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예] 현재 월 기본급 105만 원에 분기별로 상여금을 따로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101만 원 선인 최저임금이 내년에 5~6% 인상되어 106만 원이 되더라도 사업주는 기본급을 올려주지 않아도 됨 ⇨ ∴ 기본급 105만 원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계산하면 인상된 최저임금을 이미 넘어서게 되기 때문임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5. 20. 기자회견 시 발언 ⇨ “통상임금의 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것은 통상임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최저임금과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 임금 체계에 미치는 영향

■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체계 단순화



-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고정 상여금을 늘릴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임
 - 종래 우리 임금 체계는 기본급 비중이 낮고 각종 수당이 많으며 상여금 비중이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 **통상임금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근본 원인 중의 하나임**

◇ 그동안 왜곡된 임금 체계로 인하여 발생하여온 모순 현상: 0.5배 가산 지급되어야 하는 초과근로수당이 소정 근로시간의 수당보다 작음
▶ 2012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근로자는 매달 소정 근로시간(167.2시간) 근로로 300만 원(정액 급여+특별 급여)을 받고, 초과근로시간(12.8시간) 근로로 18만 원(초과 급여)을 받았음 ⇒ 시간 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소정 근로시간 시급은 1만 8,000원이고, 초과근로시간 시급은 1만 4,000원임 ⇒ 초과근로시간 시급이 소정 근로시간 시급보다 1.5배 많은 것이 아니라 0.8배밖에 되지 않았던 것임

■ 포괄임금제로 전환 촉진

- 상여금과 통상임금 문제를 아예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괄임금제로 임금 체계를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상여금 체계의 변화

- 비고과 연공형 정기 상여는 줄어들고 성과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과 상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IV. 토론: 사법부의 판단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

가. 재계: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 “공평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과도하게 법문의 논리에만 얽매일 경우 경제 사회의 거시적 흐름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음

나. 노동계: “전혀 고려되지 말아야 한다”



▣ “추가 노동비용은 지난 3년 동안의 **체불임금일 뿐임**”

- 재계가 산출한 38조 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새로운 비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당연히 받았어야 할 체불임금이고, 이 돈으로 인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고용과 투자를 촉진시키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투자 내지 촉매제가 될 수 있음. 끝.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2015. 9. 19.

윤리감사관실

1. 검토배경

- 법관의 재판상 판단은 법관의 독립상 일반적으로 사법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받아들여져 왔음
- 그러나 법관의 재판상 판단이 문제가 되어 국민과 여론의 비난과 비판을 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환형유치에 있어 벌금액에 따라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는 개정 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법정 하한보다 낮은 유치기간을 정한 사례 [남○○ 부장판사(○○기)]
-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논란이 된 사례 [김○○ 부장판사(○○기), 이○○ 前 부장판사(○○기)]
- 뇌물수수 사건에서 필요적으로 병과해야 하는 벌금형을 누락하여 국감에서 지적된 사례 [2014년 광주지법 국감]

- 잘못된 재판결과는 사법부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임 ➡ 직무감독을 행할 필요성 자체는 있음

- ①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음(상소절차, 청구이의 절차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
- ② 당사자간의 형평과 법적 안정성에 해를 끼칠 수 있음
- ③ 특히 고의·악의적인 명백한 오판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고 사법부의 신뢰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게 됨

- 다만, 재판의 독립이라는 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재판 판단에 대한 직무감독의 가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재판과 관련된 사법행정권(직무감독권)의 한계 검토 필요
- “재판의 독립” 원칙에 배치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 검토실시에 앞서 검토방향을 먼저 설정하고자 함



2. 사법행정권 및 그 한계

가. 사법행정권의 의의

- ▣ 사법재판권의 행사나 재판제도를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행정 작용
 - 사법행정권에는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권 및 법관의 직무상 의무 준수와 그 위반에 대한 감독, 시정 관련 권한 포함
- ▣ 사법행정권자의 지휘·감독권
 - 법원조직법 제29조 제3항 등은 “(소속기관장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직무상 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법원조직법

제29조(지방법원장)

-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법관도 공무원으로서 사법행정권자인 소속기관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함 ➡ “서면경고”와 “구두경고”(주의촉구)도 직무상 명령의 하나임
 - 법관에 대한 서면경고와 구두경고는 (징계불문 시의 서면경고 외에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음
- 직무상 명령은 그 본질상 위와 같은 서면경고와 구두경고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나. 법관의 독립에 관한 사법행정권의 행사 범위

▣ 사법행정상의 감독권의 한계

- 법관 본연의 직무범위인 재판에는 사법행정권이 미치는 않음 ➡ 헌법 제103조 법관의 직무상 독립의 규정으로부터 나오는 원칙



- 사법행정권도 특정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권 행사에 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가짐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윤리강령
전문(일부)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제1조 (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 **재판 과정에서의 오류는 심급제도를 통해 시정됨이 원칙**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 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재판사항의 범위**

● **의미** ➡ 법관이 재판의 형식으로 행하는 모든 작용

-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권리로서 고유의 쟁송뿐만 아니라 광의로 재판의 형식으로써 행하여지는 절차 등을 포함. 비송사건, 가정심판, 소년심판, 집행사건 등도 이에 속하는 것

법원조직법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 재판사항에 포함되는 내용 ➡ 재판의 내용, 재판의 절차 등 재판과 직접 관계 있는 모든 행위
 - 재판이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의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코 이에 한정된 것만은 아님

▣ 직무감독권 범위 내에 있는 재판사항

- 재판의 독립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님
 -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로서, 법관이 법과 양심 이외의 일체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판단’한다는 의미
- 전국법관 워크숍에서도 절차규정에 명백히 위반된 재판진행 방식에 대한 주의 환기, 명백한 실수에 대한 주의촉구 등은 사법행정상 감독권의 범위 내라는 점에 대해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음
 - 2009. 4. 20.과 21.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전국법관 워크숍에서 사법행정권의 한계에 대하여 논의

▣ 외국의 사례

- 독일의 경우, 연방법원의 판결례에 의하면 법관의 직무행위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행위”와 관계되는 모든 직무감독 조치는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를 두고 있음

[핵심영역]

① 재판, ② 재판준비 및 실행에 이바지하는 모든 행동들, ③ 심리 및 재판의 과정 등

[예외]

핵심영역의 경우에도 ‘명백한 실책’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감독조치가 가능

① 폐지된 법률을 적용한 경우

② 법원조직법상 변호사에 대해 질서유지수단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음에도 소송지휘에 불응하는 변호사를 법정경위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끌어내도록 한 행위 등

- 일본의 경우에도 사법행정 감독권이 배제되는 ‘재판관의 재판권’은 어디까지나



재판의 '내용'임

- 재판을 행함에 있어 취하여야 할 태도나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는 사법행정의 감독권이 미친다고 봄
- 나아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에 있어서도 **명백한 법령위반, 명백한 오판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행정 감독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봄**¹⁾
 - ① 집행유예 결정자이고 징역형에 처하여야 할 사건을 부주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과거 유사 유형의 실수가 2회 더 있어 계고처분을 받은 사례 (1963.)
 - ②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최고재판소 스스로 제정한 형사소송규칙시행규칙을 간과하여 오판을 하여 과료 처분을 받은 사례(1950. 소법정의 최고재판소 재판관 4명 전원을 과료에 처함)

● 미국의 경우도 재판에 관한 사항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함

- ① 뉴욕주에서는 법관이 명백히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판결에 관한 조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② 뉴저지주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함
 법관의 재판상 잘못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것이 충분히 신중하고 능력 있는 법관을 기준으로 할 때 **“명백한” 실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분명한 증거가 있으며, 아울러 법관의 잘못이 ‘터무니없는 것(무능)’이거나 ‘악의적’이거나 반복된 잘못이어서 그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를 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결국,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는 직무감독의 행사가 가능함

다. [참고] 재판사항 관련 물의사례 및 그 조치내용

▣ 김○○ 판사(○○기)

- 국선변호인선정 취소결정 소급작성 ➡ 감봉 4월 징계(2014년)

▣ 박○○ 판사(○○기)

- 경매사건의 기록검토를 소홀히 하여 유치권 신고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1) 裁判所法逐條解説 中券(1969), 146頁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있음' 표시 후 경매 진행 ➡ 서면경고(2005년)

■ 김○○ 부장판사(○○기)

● 합의서 제출 간과 판결 ➡ 조치 없음(2007년)

-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반성문으로 오인하는 등으로) 문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사안

■ 박○○ 판사(○○기)

● 법정구속 관련 고지절차 등 위반 ➡ 구두경고(2007년)

- 피고인을 법정구속을 하면서 법정구속 됨을 고지하지 않고 구속사유 고지나 변명의 기회 제공 등의 절차도 취하지 않았으며, 검사가 법정에 있음에도 검사를 통해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실무관에게 영장을 주고 그대로 퇴정해버려 피고인이 도주

■ 김○○ 판사(○○기)

●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착오로 영장 발부 ➡ 조치 없음(2000년)

- 영장당직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해당 법관에 대해서는 인사반영 조치(영동지원 전보)

■ 김○○ 부장판사(○○기)

● 구속기간이 도과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소급하여 발부 ➡ 서면경고(2006년)

■ 이○○ 부장판사(○○기)

● 사건처리 지연 ➡ 법원장과 수석부장이 수차 권고, 문책성 인사로 ○○지법 전보(2010년)

■ 김○○ 판사(○○기)

●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실질심문기일에 불출석 ➡ 서면경고(2011년)

■ 기타 유형별 사례

● 구속영장 반환 요구를 하지 않아 불법구금 논란 ➡ 모두 구두경고



정○○ 판사(○○기, 2009. 6.경), 염○○ 부장판사(○○기, 언론보도됨, 2007. 8. 경), 조○○ 판사(○○기, 2009. 1.경)

- 판결등록 지연(판결원본에 의하지 아니한 선고에 기인한 경우 포함) ➡ 서면 경고 또는 주의촉구
- 판결등록 오류 ➡ 서면경고, 주의촉구(주된 조치), 또는 조치 없음
- 조서작성 오류 ➡ 구두경고 또는 조치 없음

- 조○○ 부장판사(○○기) : 피고인 퇴정하에 증인신문을 한 후 피고인에게 증언 요지를 고지하지 않으면서 공판조서에 그 이유를 '증언이 일관성이 없어 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변호인 열람·등사) 위 증언요지 불고지 이유 부분을 '증언이 난잡하고 복잡하여 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판조서에 수정 기재함(변호인 열람·등사) ➡ 상고심에서 공판조서 대체의 위법 여부도 판단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적인 비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 조치하지 아니함(2011년)
- 김○○ 부장판사(○○기) : 감정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 조서에는 감정인이 출석하여 선서한 후 감정한 것으로 조서를 임의로 작성 ➡ 수사기관 고발되어 기소유예, 별도의 내부 조치 없음 (2005년)
- 김○○ 부장판사(○○기) : 잘못 작성된 조정조서가 양측 대리인과 피고 본인에게도 송달된 상태에서 원고대리인의 경정신청을 받고 피고대리인에게만 확인한 후 기존 조정조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송달 ➡ 불문(2001년)
- 정○○ 판사 (○○기) : 검사의 증인 신청과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재판장이 불허하였음에도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검사가 구형을 하지 않았음에도 구형을 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기회를 준 것처럼 기재 ➡ 별도의 내부 조치 없음(2008년)
- 이○○ 판사(○○기) : 변론기일이 변경되었음에도 사무분담 변경 前 재판장이 기일변경명령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 재판장이 착오 입력된 사건진행내역에 기초하여 만연히 기일진행 변론조서 작성을 지시하고 전임재판장의 도장을 날인 ➡ 구두경고(2012년)

3. 재판결과(오판) 직무감독권 행사의 영향 및 이를 고려한 검토방향

▣ 긍정적 영향

- 튀는 판결의 최소화에 기여하여 법적 안정성,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 국회와 언론이 단골로 지적하는 사례의 발생을 예방
- 재판받는 당사자들이 권리관계 예측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
 - ▶ 각종 거래에 있어 위험 비용의 감소 가능

● 법관에 따라 재판결과가 다를 경우의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복불복에 의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함
- ‘법관이 누구인지’라는 요소로 인해 불필요한 절차 비용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현행 법령에 반하는 판결 등 사법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판결을 최소화함

■ 부정적 영향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사법행정권의 개입이라는 이유로 법관들에 의한 대규모 반발도 발생 가능

- ① 직무감독의 대상에 대한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 ② 직무감독 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 나아가 직무감독이 가능한 범주의 잘못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²⁾에 대한 제재만으로도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논란 제기 가능
- ③ 정당한 직무감독권 행사를 악의적으로 왜곡·선전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 현재 일선법관들이 자신들에 대한 감시·감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분위기도 고려할 필요 있음

● 법원에 대한 진정·청원, 국민감사청구, 인권위 등 외부기관에 대한 진정, 오판을 이유로 법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증가 가능

- 예컨대, 확립된 판례에 따른 증거능력 및 가치 판단을 잘못된 경우에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외부에 보일 경우, 상당한 수의 재판에서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들이 심급에 따른 사법시스템 외에서 만족을 얻거나 판사를 제재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할 것임

- 진정·청원 등의 숫자 증가와 그로 인한 사법불신 증대의 외관 형성이 발생할 수 있음

● 종래 심급제에 의하여 교정되는 “잘못”들이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해 외부에 드러날 경우, 그 객관적 숫자나 내용에 따라 오히려 법원에 대한 신뢰가 훼손

2) 특히 고의나 악의,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과 같은 ‘내심의 의사’를 요건으로 할 경우 불분명성은 더욱 증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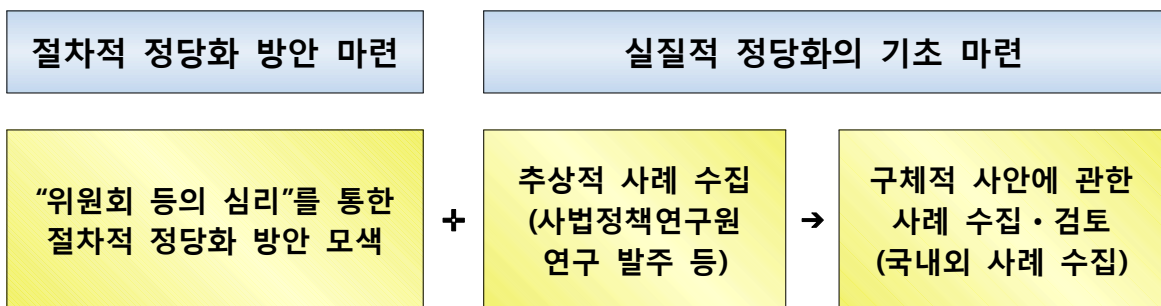


될 우려가 있음

- 법관을 위축시켜 법관으로 하여금 소극적·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음
 - ▶ 법관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판결을 하기 곤란해질 수 있음
- 직무감독권 행사 시 부정적 영향 발생을 최소화할 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 '명백'할 뿐 아니라 '중대'한 잘못으로서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물의가 야기된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절차적으로 정당·투명하게 행사**
- '중대'한 잘못 ▶ 사소한 잘못까지 개별적 직무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를 옥죄는 결과가 될 것임
- '물의야기' 발생 ▶ 내부적으로 인지하는 모든 잘못마다 문제삼는 것은 부정적 영향 발생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사후적·개별적' 검토 ▶ 사전적·포괄적 검토는 그 자체로 법관들의 강한 불만 제기 가능
-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중대·명백한 잘못' 여부의 판정 자체가 주관적·자의적이라는 시비 발생 시 '부정적 영향'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됨

4. 직무감독권 행사 방안

1) 개요



2) '중대·명백한 잘못'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마련

- [판단 주체] 외부인사 vs. 내부인사 vs. 기타

- 판단주체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정당성 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외부인사에 의한 판단의 경우] ➡ 외적 객관성 확보 가능

- 법원 내부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닌 외부의 객관적 시선에 의한 판단임을 보여줄 수 있음
- 다만, 그 판단결과로 영향을 받을 법관들로서는, 외부인사가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판단한 것으로 부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음
 - 특히 재판상 판단에 관한 직무감독에 대하여 가장 불만을 제기할 사람은 **내부의 법관**이라는 점에서 외부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음

[내부인사에 의한 판단의 경우] ➡ 내적 가치 반영 가능

-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가치가 정확히 반영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내부인사는 사법행정권자의 영향을 받아 판단하는 것으로 바라볼 여지도 있음
- 또한 ‘중대·명백’한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장단점을 조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와 내부인사’가 모두 포함된 **위원회가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법원 외부에 객관성을 보이려는 경우 vs. 법원 내부에 설득력을 높이려는 경우)에 따라 결정할 필요는 있음
- 한편, ‘중대·명백’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경우이어야 하는 데다가, 특히 **법관들은 ‘판단’을 업으로 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법관들 ‘스스로’ 판단한 것을 더 우선시할 수 있음 ➡ 각 법원의 ‘판사회의’를 통한 판단도 차선적으로 검토 필요

- 한편, 모든 사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판단받는 것으로 족함 ➡ 이미 판단받은 바 있는 동일한 유형으로서 법원 내·외에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사안까지 위원회 등에 회부할 필요 없음

- 한편, 다른 목적의 신규 위원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심의 권한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위원회 ①] 별도의 위원회 설치 여부 ➡ 부정적임



-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재판결과'에 대한 심사를 '제도화'한다는 의미가 외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음 ➡ 이 경우 그 자체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특히 신규 위원회의 경우 그 구성위원들이 관련된 개개의 언론보도를 접할 때마다 위원회 소집하여 '개입'하기를 원할 것임 ➡ 법원 감사위원회의 경우 매 사안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가급적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위원회 ②] 기존 위원회의 활용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가능성
- 통일적 판단을 위해서는 대법원(또는 법원행정처)의 위원회를 활용하여야 함
 -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이미 설치된 위원회 중 이러한 성격에 정확히 맞는 위원회는 없음

[2014 사법연감]

- **대법원 위원회**
 1. 법관징계위원회, 2. 판례심사위원회, 3.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 4.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5. 법관인사위원회, 6. 양형위원회, 7. 사법참여기획단, 8.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9. 국민사법참여위원회, 10.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1. 법원 감사위원회)
- **법원행정처 위원회**
 1. 고등·보통징계위원회, 2. 소청심사위원회, 3. 법원행정처 공적심사위원회, 4. 중앙·보통고충심사위원회, 5. 제안심사위원회, 6.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 7. 대법원 예산집행심의회, 8. 법원청사건축위원회, 9. 법원청사건축 설계심사위원회, 10.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11. 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 12.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13.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 14.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15. 청원경찰징계위원회, 16.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17. 보통승진심사위원회, 18. 대법원청사관리위원회, 19.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 20.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21. 해외연수선발위원회, 22. 성희롱심의위원회, 23. 코트넷운영위원회, 24. 국선변호위원회, 25. 국제규범연구위원회, 26.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27. 성과급심사위원회, 28. 홈페이지평가위원회, 29. 홈페이지관리위원회, 30. 법원기록보존소 기록물평가심의회, 31.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33. 예산결산 심의위원회, 34. 희생·파산위원회, 35.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36. 국내 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

- 다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법원 감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 있음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다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함
-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원의 감사활동’ 자체가 심의대상이므로 법관의 행위의 당부를 평가하는 위원회로는 부적절함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 적용이나 직무 관련 사건에 관한 심의가 가능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권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의 심의
2.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3.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한 윤리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의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건의
5.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6.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 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도 법관윤리강령상의 의무임

법관윤리강령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제4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 ① 법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 ② 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 과거 ‘재판사항’으로 여겨지던 ‘법정 언행’에 대하여 직무감독권을 행사하기 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전례도 있음

▣ [심사방법]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중 가능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가능
 - 참고로,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각종 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사실확인 조사)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지출장, 관계인 접촉,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필요 시 관련 절차를 추가할 수 있음

- 또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내에 '안건의 사전 검토'나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바,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음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의2(분과위원회)

- ①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위원회 위원
 2.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별도의 임기 규정이 없어, 필요 시마다 위원들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론] 각급 법원 '판사회의'를 거치는 방안

- 각급 법원장이 회부한 사항은 판사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음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직능)

① 판사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5.2.16, 2009.9.28>

1. 각급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2. 대법원규칙의 제정이나 개정등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
3. 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
4. 사무분담이 확정된 후 특정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의 변경. 다만, 해당 판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6. 기타 각급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각급법원의 장이 회부한 사항
7. 제4조제3항의 경우에 판사들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 언론을 통한 물의야기 등 특정 사례 발생 시, 특정 법관에 대한 ‘개별적’ 조치가 아닌 ‘향후 발생의 예방’을 의도하는 경우, 이용 고려 가능
- ‘직무감독권 행사’의 다양한 태양 중 하나로서 판사회의에 회부하여 ‘중대·명백한 잘못’ 여부를 논의하게 함 ➡ 논의 자체만으로도 개별 판사뿐 아니라 판사회의의 구성원 전체에 적절한 재판관 행사에 관한 ‘Signal’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다만, 내부 구성원들만에 의한 논의라는 점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발생 가능한 점, 사안에 따라 회부 자체만으로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점 등은 고려하여야 함

3) 실질적 정당화의 기초 마련

▣ 위원회 또는 회의 등에서의 회부 前 사전 자료 수집·검토 필요

- ‘명백’한 잘못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함 ➡ ‘중대성’까지 부가하여 검토할 경우 더욱 명백함
-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중대·명백’의 판단이 불분명할 수 있음 ➡ 불분명한 사안을 위원회 등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음
 - 특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의 사안 회부는 ‘대법원장님’의 권한인 점 고려 필요
- 따라서 회부 前 사전적인 준비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 추상적인 사례 수집·검토 (사전적 준비)

● 사법정책연구원에 연구 발주

- ‘사법행정권의 행사의 한계 - 재판권과 관련하여’라는 주제 등으로 연구 발주
- 주제 자체에서는 법관의 반발이 없도록 ‘한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되,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직무상 감독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다양한 각도의 검토도 포함하도록 함
- 더불어 연구자료 발간을 통해 ‘논의의 발단’을 마련하고 은연 중에 법관들에게 관련된 ‘Signal’을 줄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판례위반”을 명백한 잘못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 필요

- 판례의 의미와 효력의 검토 필요
 - 판례의 구속력 존부 및 그 범위
 - 대륙법계와 보통법계의 비교
 - 대법원 판례와 그 밖의 심급의 판례의 이동(異同) 등
- 판례 위반의 원인이 판례 부지인지, 기존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결과인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 검토 필요
 - 하급심에서 판례 부지 또는 적용 실수로 인한 판례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도 고려 필요

● 해외 사법선진국 사례의 수시 수집 및 게시

- 수시로 외국 사례를 수집
- 해외의 다른 유형의 징계 사례와 더불어 재판사항에 관한 징계사실을 포함하여 ‘윤리 자료’에 게시 ➡ 자연스럽게 재판사항도 징계가 될 수 있음을 알림

■ 구체적 사안에 관한 사례 수집·검토 (사안별 처리)

● 언론 등을 통해 물의가 야기된 경우, 관련 국내외 사례의 수집

- 위원회 회부 전 국내의 과거 전례와 외국의 사례들을 수집하는 등 사전적으로 충실한 검토 선행 필요
- 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나, 그 전에 재판연구관실 등 내부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필요

인사모 1월 모임 논의 정리 내용

1. 법원행정처장의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를 위한 의견 수렴' 방안 (2015. 12. 8.자 코트넷 주요공지사항 게시글)에 관하여

- 법원행정처에서는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상시화·제도화하기 위하여 전국 법관들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한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함.
- 그간 법관 신규임용, 법원이원화, 상고법원 추진 등의 과정에서 법관들의 의견수렴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위 방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임.
- 다만,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문화개선, 재판제도발전, 법관윤리, 사법정책기획 등의 분야별로 법관 대표 위원회에서 심의 가능한 안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안건에 구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제와 프레임을 처음부터 새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법원행정처의 의제설정을 막을 수는 없고,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선결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반론도 제기됨.

2.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확보와 판사회의의 실질화

- 위원회의 구성은 법원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반영하여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함.
-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적어도 의장과 간사, 과반수 위원은 지역·심급·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판사로 위촉해야 한다는 점에는

반대의견 없었음.

- 대표 선출 및 선출된 대표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판사회의가 정례화, 실질화될 필요 있음. 일부 법원에서 직급별, 업무별 판사회의의 정례화를 위한 내규개정 작업이 진행됨. 내규 정비 및 통일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준내규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 있었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차회 모임에서 논의기로 함.

3.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약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결과

-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행정권은 대법원장에게 있고, 판사회의는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실정법상 판사가 사법행정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과 그 위임을 받은 법원장 등에게 집중된 이상, 그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으면 법관과 재판의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감시·견제하기 위하여 판사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부합하는 것임.
- 많은 판사들이 회의 참석조차 쉽지 않을 정도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
→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지 않는 판사들도 대부분 사법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제거해야. 또한 판사회의의 활성화는 결국 업무여건의 개선으로 연결됨. 실제로 한 지방법원에서 매월 통계를 돌리면서 판사들에게 사건처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판사회의의 개최에 즈음하여 이를 중단한 적이 있었다고 함.
- 판사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외부에 집단행동으로 비춰질 소지
→ 전체 판사회의 또는 직급별 판사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으로 해결 가능.

4. 사무분담 확정에 있어서의 법관참여

- 법원 내 사무분담이 사법행정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 없음.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인데(제4조 제2항), 이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있음.
- 인사이동 직후에 사무분담이 결정되므로 소속 법원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전입법관이 사무분담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그러나 인사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합하는 희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원칙을 합의하여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구체적인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법원장의 자의적인 인선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의견 일치. 더불어 영장 전담, 형사, 파산 등을 특수한 보직으로 인식하는 관행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과거에는 추첨을 실시하거나 기수, 나이에 따른 순번을 확정된 후 '홀짝'에 따라 민·형사 등 재판부에 번갈아 배치한 사례가 있었다고 함. 사무분담을 정하기에 앞서 평판사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공유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작성자	이 지법판사/판사실 평택지원(2016-02-05 오후 11:53:35)
게시기간	영구게시
제목	[인사모]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방안' 1월 모임 후기
첨부파일	인사모 1월 모임 논의 정리 내용.hwp

안녕하세요? 평택지원의 이 지법판사입니다.

올 겨울은 따뜻하게 지나가나 싶더니 1월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었지요.

저희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모')은 추위에 관계 없이 올해도 'HOT'한 주제로 매월 달리고 있습니다.

인사모 1월 토론회는 1월 29일 서울에서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우리 법원의 운영이 수직적, 관료적이어서 사법부의 핵심 구성원이자 재판권 행사의 주체인 일선 법관들의 목소리를 사법행정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작년 12월경 공지사항을 통하여 법관들의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날 모임에서는 행정처의 구상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표 선출을 위한 판사회의(지역, 실급, 직급별)의 실질화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고, 법원별 관련 내규들도 비교검토해 보았습니다. 또한 판사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들과 함께 인사이동철의 최대 현안인 '사무분담'에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논의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곧 해외연수를 가시는 서울중앙의 송 판사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송판사님께서 이미 발제내용을 정리한 장문의 발표문을 자료실에 올려 주셨네요(법원별 내규 비교표도 함께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민주적인 법원운영에 대한 저자의 깊은 고민과 함께 사법선진국인 미국, 독일에서 판사회의가 가지는 위상과 역할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감동적인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글의 말미에서는 전국법관회의 창설을 제안하고 계신데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단위의 판사회의에 관한 경험과 연구가 계속 쌓여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인사모의 다음 모임은 2월 26일(금) 저녁 7시 서울로 잡혔습니다. '판사회의의 실질화'라는 주제로, 지난 모임에 이어 판사회의의 운영 및 의결방식, 의장 간사 등 대표의 선출, 표준내규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업무변경 등으로 정신없는 시기이지만 지난 1월 모임처럼 많은 회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2월 후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지법판사 올림.

민판연 관련 대응방안 검토

2018. 7. 31.

기획조정실

1. 뉴시스 기획기사 및 대한변협 성명서 분석

■ 9. 14.자 뉴시스 기사 개요

☑ "사법부 하나회 민사판례연구회 해부"

▶ ① 사법부내 요직 독식 - 현직 대법관 4명도 '민판연'

- 행정처 8명, 전현직 대법관, 수석재판연구관, 주요 법원장 등

▶ ② 37년의 法脈 - 전관예우 통로 우려

- 법원 관계자 인터뷰 "민판연은 학술단체라기보다는 '사조직', 대법관이나 고법 부장 등 고위 법관들은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 회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 근무지까지 밝힐 경우 전관예우나 재판의 공정성 시비 우려'

- 서영교 의원 "현직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이 연구회 계속 남는 것은 오해 소지. 연구회가 전관예우 통로가 되고 있는지 이번 국감에서 중점 파악할 것"

▶ ③ 사조직 색채, 갈수록 짙어져

- 폐쇄적 운영으로 2008년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순수성 의문되고 법원 운영에 부담'된다는 결과. 그럼에도 현 대법원장님 체제에서 개선 없음

▶ ④ 회원 수 매년 증가 - 주류의 힘?

- 우리법연구회 와해와 달리 사법부내 주류로서 내식구 챙기기 작용하여 회원 증가. 2010년 부장급 심의관 4명 탈퇴 후 재가입 등 영향력으로 위화감 조성

▶ ⑤ '외고-서울대 법대' 新주류 세대교체 진행형

- 경기고 22명, 외고 출신 19명. 젊은 외고라인 향후 영향력 증대 예상

■ 9. 14.자 대한변협 성명서 개요

- 민판연은 다수의 전·현직 대법관과 주요 보직 판사, 특정 로펌 변호사로 구성되고, 폐쇄적 조직 운영을 하여 대법원도 2008년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결론내림.

- 대한변협은 민판연이 고위 전·현직 판사들의 사조직으로 전락하여 법관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의 폐단을 낳고 전관예우의 통로가 되는 것을 심히 우려함.. 민판연이 학술단체로서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바람



■ 분석

- 뉴시스 기사는 2013. 9. 연합의 '사법의 그림자' 기사와 사실상 동일
⇒ 통신사로서 다른 통신사의 기획 기사를 2년만에 재탕한 점은 의문

▶ 2013. 9. 연합뉴스 '사법의 그림자' 시리즈 기사

- ①민사판례연구회 200명 첫 돌파, ②'고위법관 승진코스' 법원행정처, ③고위법관, 부적절한 사외이사行, ④재판연구관 5년 만에 27% 증가 ⑤신임판사 35% 강남·특목고 출신

▶ 5회로 구성된 시리즈 기사라는 점은 물론, 내용면에서 새로운 것이 거의 없음

- 9. 14. 오전 5시경 뉴시스 기사 게재 후 별다른 반향 없었음에도 같은 날 14시경 대한변협 신속한 성명 발표
 - 성명서에 뉴시스 기사 외에 새로운 내용 없다는 점과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기사의 배경에 대한변협이 있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음
- 기사에서 출처로 언급된 서영교 의원실 입장 (홍○○ 보좌관)
 - 뉴시스 이○○ 팀장이 의원실에 먼저 찾아와 기사에 서의원 언급 제안
 - 의원실에서 정보 제공한 것 없고, 특별히 국감에서 문제삼을 의사는 없음
- 다른 언론 반응
 - 뉴시스 기사를 받아 쓴 매체 전혀 없음
 - 대한변협 성명도 법률신문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매체 등 마이너 언론이 온라인에서 인용한 것이 전부이고, 주요 언론의 반응은 없음 ⇒ 법률신문 + 헤럴드경제, 뉴스토마토, 파이낸셜뉴스, 로이슈, 경제투데이
- 사법부 부담요소
 - 주요 보직 독점, 사조직화, 특정 로펌 언급, 현 대법원장님 체제하 개선 없음, 법사위원 국감 질의 가능성 등은 기본적으로 부담 요소임
 - 단 보도한 매체의 수와 영향력 정도 등에 비추어 결정적 부담은 아님
 - 만약 기사배경에 대한변협이 있다고 볼 경우 국감에서 추가 이슈화 시도 가능성 있음



2. 대응방안

■ ① 무대응 방안

- [개요] 상황 추이를 주시하되, 당분간 구체적 대응하지 아니함
- [근거] ① 마이너 언론과 대한변협의 단발성 문제제기에 불과하여 일일이 대응함은 과잉반응임 ② 확산가능성 낮음 ③ 국정감사 이후에는 별다른 부담도 없음
- [위험성] ① 법률신문 기사의 영향력 무시할 수 없어 법조계,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으로부터 비판 여론 대두 가능성 ② 국정감사에서 처장님 상대 탈퇴 의사 표명 강권 등 부담스런 상황 표출 가능 ③ 언젠가는 또다시 문제될 사안이어서 무대응은 미봉책에 불과
- [참고사항] 무대응하더라도 언론, 변협, 법원 내부(국제인권법학회 등)는 물론 서영교 의원 등 정치권 동향 파악 필수적임

■ ② 행정처 고위 법관 탈퇴 방안

- [개요] 법원행정처 실장급 또는 국장급 이상 간부진 탈퇴
- [근거] ① 적어도 사법행정 담당 고위 법관은 탈퇴하여 ‘하나회’, ‘주요 보직 독점’ 등의 비판은 피할 필요 있음(인사 담당 법관은 현재도 탈퇴하고 있음) ② 행정처 고위 법관은 수가 적으나 상징성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대응으로 충분한 효과 거둘 수 있음 ③ 문제를 무한정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 [반론] ① 정당한 학술단체 활동을 타의에 의해 중단하는 것은 정당한 대응이 아니고, 다른 연구회와 형평성 문제됨 ② 탈퇴하지 아니한 대법관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형태가 됨 ③ 종전에 더 강한 문제제기 및 논란이 있을 당시에도 탈퇴하지 않다가 이번에 탈퇴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고 과잉대응임
- 이 경우 탈퇴 시기에 대한 전략적 검토 필요



■ ③ 행정처 소속 법관 일괄 탈퇴 방안

- [개요] 평심의관을 포함하여 일괄 탈퇴
- [근거] ① 일선 법관들의 비판적 시선을 해소하고 사법행정의 공정한 의관을 확보할 필요 있음 ② 인사 담당 평의심관이 탈퇴하고 있는데, 일선 법관들은 다른 분야 평의심관도 유사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전체 평의심관 탈퇴 필요성 있음 ③ 사법부 내에서 주류, 성골 등의 표현이 회자되는 것은 법관 전체 사기 저하에 영향 있음
- [반론] ① 뉴시스 기사 후 법관 익명 카페에서도 아무런 언급 없는 등 일선 법관들의 반응 미미함 ② 현재에도 법관이면 누구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다양한 법관들의 가입신청을 권장함으로써 문제 해결함이 정도임

■ ④ 법원장 등 포함 일선 고위 법관 전원 탈퇴 방안

- [개요] 법원장 이상 또는 고법 부장 이상 고위 법관 전원 탈퇴
- [근거 및 반론] 평정권자 또는 잠재적 평정권자까지 탈퇴하여야만 일선 법관들의 문제제기를 봉쇄할 수 있음 vs 연구회 가입 법관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로서 실현가능성도 없음

■ 검토 의견 ⇨ 국정감사 문제제기 여부 및 장기적으로 민판연의 인적 구성 개선 상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

- 계속되는 문제제기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해소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으나, 최근 뉴시스 등의 문제제기는 2년전 보도의 반복에 불과하고 이에 가세한 세력도 현재로서는 미미함 ⇨ 즉시 탈퇴 등의 대응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어 보임
- 민판연이 최근 ① 처음으로 검사를 회원으로 영입하였고, ② 판사 출신이 아닌 교수의 비중이 급증(신입회원은 대체로 법관 대 교수가 1:1의 비율에 가까움)하는 등 외부의 공격을 방어할 여건도 일부 조성되고 있음 ⇨ 민판연으로 하여금 향후 판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



및 현직 검사 등을 대거 영입하도록 하고, 현직 법관 중 다양한 경력(지방 소재 대학 출신, 초임지 지방권 등)의 법관을 신입 회원으로 받도록 한다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

- 언론에서 동일한 내용의 문제제기가 이미 몇 차례 있었고, 더 이상 새롭거나 의미 있는 비판 지점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임
- 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탈퇴하더라도 행정처 근무를 마치고 민판연에 복귀하는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되는 등 근본적 해결책은 되기 어려움
- 다만, 일선 법관들의 우려와 소외감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시하여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의 탈퇴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공정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음
 - 이 경우 국정감사에서 강한 문제제기가 있거나, 법원 내부 계시판 또는 익명 카페 등에서 일선 법관들의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탈퇴 방안을 활용함이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음
 - 국정감사 이전 선제적으로 탈퇴 여부는 정책결단 사항임(검토자 의견은 신중소극)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추가 정책결정 필요사항 검토

2016. 4. 15.

통합실무지원단

1. 검토할 쟁점

- 안건 선정시 위원회 의견 존중 방법
- 1차 회의시 속행 가부 및 건의문 채택 여부
- 비실명 안건 제안 허용 여부
- 기타 사항

2. 안건 선정시 위원회 의견 존중 방법

가. 검토의 전제

-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9조

제9조 (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

- ① 모든 법관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제안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결정·회부한다.

- 명문의 규정상 안건 결정 및 회부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있고, 법원 행정처장은 법관이 제안한 안건을 고려하되 그에 구속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위원회 의견 존중의 필요성

- 위원들이나 일선 법관들의 관심과 동떨어진 안건이 상정될 경우 '들러리 프레임' 또는 '예정된 각본 프레임'에 빠질 우려 있음

- 선례의 중요성



-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경험한 것처럼(단수 추천 후 위촉시 발생한 문제점), ‘들러리 프레임’에 관한 우려로 인해 규정상 법원행정처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사실상 상당히 제한할 경우, 그 여파는 1차 회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례로 기능하여 차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 필요함

나. 방 안

▣ 1안 : 사전 의견청취 후 안건 결정

- 위원회로부터 회부를 희망하는 안건에 관한 의견을 청취 후 이를 감안하여 안건 결정
- 다양한 의견청취 방법 가능
 - 처장님과 위원장님들 간의 간담회 실시하여 의견 청취
 -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일정 시점까지 회부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요구
- 문제점
 - 처장님께서 안건 결정시 청취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부담 생길 수 있음

▣ 2안 : 사전 의견청취 없이 안건 결정

- 규칙 제9조 제2항에 충실하고, 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에 부합
- 법원행정처장의 안건 결정 권한을 가장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법
- 문제점
 - 안건 결정을 일방적으로 하였다는 비난 가능

▣ 3안 : 법원행정처장 안건 복수 결정 → 위원회 심의 안건 선택 → 법원행정처장 선택된 안건 회부

-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복수로 결정하고(가령



4~5건), 위원회에서 그 중 2~3건을 심의 안건으로 선택하면, 법원행정처장이 선택된 안건을 회부함

- 법원행정처장의 안건 결정권한 보장과 위원회 의견 존중의 타협
- 법원행정처장이 논의의 큰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위원회가 구체적인 논의 안건을 제시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안으로 볼 수 있음
- 문제점
 - 규칙의 명문의 규정과 달리 회부 안건의 사실상 결정 주체가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위원회가 됨
 - 법원행정처장이 안건을 결정하였음에도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됨 (심지어 5건의 안건을 결정하였는데, 위원회에서 1건만 심의하겠다고 하는 등 권한 남용 가능)
 - 결정할 다수 안건(4~5건)에 관하여 어느 안건이 선택될지 알 수 없으므로 사전에 그 적절성 여부를 모두 검토해야 하는데, 통합실무지원단에서 이를 모두 검토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음 (2개 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므로 10건 정도의 안건에 대하여 회부되더라도 무방하다는 점에 관한 검토가 마쳐져야 함)

다. 검토

▣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통한 비공식적 사전 의견청취 절차 진행

- 법원행정처장이 안건을 결정·회부하면서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통한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비공식적으로라도 거치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됨
- 법원행정처장의 안건 결정·회부 권한을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안건을 결정·회부하였다는 비난 사전 차단 가능



■ 1차 회의 안건 결정·회부를 위해 법원행정처장님과 2명의 위원장 간 오찬 자리 마련 등을 통한 비공식적 사전 의견청취 절차 진행 고려

- 1차 회의 안건의 결정·회부는 물론 위원회별 향후 운영 방향, 1차 회의 진행 방식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의견 교환과 공감대 형성의 자리 마련 필요

3. 1차 회의시 속행 가부 및 건의문 채택 여부

가. 검토의 전제

■ 규칙 제9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 (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법원행정처 실장, 국장, 심의관 등 업무 담당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다.
- ⑤ 심의한 안건에 관하여 다수의견만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다수의견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다수의견과 차순위 소수의견을 함께 건의안으로 채택한다.

■ 법원문화개선위원회 간담회시 지적 사항 (문○○ 부장판사)

- 문화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토론을 벌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건의문을 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됨

■ 검토시 고려사항

- 시간상 제약 : 매년 첫 정기회의 경우, 위원회 구성 및 안건 선정시부터 1차 회의시까지 사이에 기간 짧음 ⇒ 안건에 관한 의견 수렴이나 검토에 시간 부족
- 안건 성격상 제약 : 논의 안건의 성격상, 현재 각급 법원의 실태, 법관들의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등이 필요할 수 있음 (특히 법원문화개선위원



회 안건의 경우, 신속한 논의 및 결론 도출이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위원의 임기(1년)** : 위원회의 활동을 각 정기회 기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구성으로 활동하는 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음

나. 속행 가부

▣ **심의 안건에 대한 당해 회의 의결 원칙, 부득이한 사유 있을 경우 속행하여 다음 회의 의결**

- 당해 회의시 안건에 대한 의결을 강요하면 특정 위원에 의한 부적절한 결론이 도출될 우려도 있음
- 설문조사,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여 안건 성격상 부득이 속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단, 속행은 당해 연도 1차 회의에 한정되고, 2차 회의 때에는 반드시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함으로써 회부 안건이 의결 없이 폐기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함**

다. 건의문 채택 여부

▣ 안건 성격 등과 무관하게 **심의를 마치면 규칙에 따른 의결절차 진행 필요**

- 의결을 전제로 하지 않은 **난상토론은 불가**

▣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의견 ⇒ 다수의견 건의안 채택**

▣ **출석위원 과반수 & 2/3 미만 찬성 의견 ⇒ 다수의견 및 차순위 소수의견 모두 건의안 채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있는 의견 無 ⇒ 건의안 채택 無 BUT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들 의견은 열거·제시할 필요**



- 의결절차 진행 후 건의안이 없을 수는 있지만, **의결절차 자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

4. 비실명 안건 제안 허용 여부

가. 검토의 전제

■ 안건 제출 활성화 방안으로 검토된 바 있음

- 현재 다수의 안건이 제출되어 안건 제출 활성화를 위한 도입 필요성 ↓

■ 위원들 및 법관들의 요구 많음

- 위촉식 후 간담회, 회의장에서 다수 위원이 ‘비실명’ 안건제출 또는 ‘소통의 창’ 방법에 의한 비공개 안건제출 허용을 요구함
- 안건제안 게시판에도 동일한 취지의 글 있음

■ 현재 위원을 통한 비실명 안건 제안 이루어지고 있음

◎ 2016. 4. 12. 권○○ 위원이 올린 안건

작성자	권○○ 지법판사/판사실 인천지방법원 (2016-04-12 오후 01:24:13)
문서제목	[항소율 산정방식 등에 관한 의견]

안녕하십니까.

판사들로부터 취합한 의견을 전달합니다.

1. 항소율 산정 방식 개선 : 현재 항소율 산정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한 사건에서 항소된 사건을 비중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당사자 위주로 한 위수가 2명이고 피고가 1명의 사건에서 위수가 1인 만이 항소할 경우 기존의 방식에 이차면 그 사

■ 쟁점은 코트넷 게시판을 통한 ‘비실명’ 안건 제안 허용 여부임

나. 방 안

■ 1안 : 불허

- 현 상황에서 특별히 비실명 안건 제안을 허용할 필요 없음
- 이미 큰 부담 없이 자신의 생각을 게시판에 올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됨

- 다수의 법관은 비실명 글쓰기가 가능하더라도 글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소수의 특정 법관들이 비실명을 이용해 여러 유사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다수가 비슷한 생각인 것처럼 부풀릴 우려도 있음 (실명인 경우 동일인이 여러 글을 올리더라도 과급력이 약함)

■ 2안 : 비공개 · 비실명만 허용

- 게시판에 공개글을 쓸 때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비공개글을 쓸 때에는 실명/비실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종전에 검토한 바 있음)
- 비공개글의 열람대상 범위에 관하여, 관리자(실무지원단)만 열람하게 할 수도 있고, 위원들도 열람하게 할 수 있음 (추가적인 정책 결정 필요함)
- 소통의 창에서 비공개/비실명 글쓰기가 가능한 점을 감안

■ 3안 : 비실명 안전 제안 허용 (익명게시판 포함)

- 여전히 대다수의 법관은 실명으로 자신의 견해 밝히는 것에 부담 있음
 - 법원행정처와 다른 견해 피력시 : 인사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
 - 법원행정처에 동조하는 견해 피력시 : 소위 ‘왕당파’로 분류될까 우려
- 실명 공개도 서슴지 않는 소수의 특정 성향의 법관들이 게시판을 장악하는 현상에 관하여, 다수의 법관들이 목소리를 낼 창구가 될 수 있음
- 비실명으로 게시판 글쓰기를 허용하더라도, 법관들의 일반적인 수준, 코트넷 게시판의 경우 전산정보관리국에서는 비실명 게시글이라도 그 작성자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극단적으로 이상한 게시글은 작성되지 않을 것임

다. 검토

■ 향후에도 공개 · 비공개 불문 비공개 안전 제안 불가 원칙 고수

- 판사가 안전 제안자로서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은 당연



- 다만, 판사가 위원회 측(위원장, 위원, 간사)이나 법원행정처 측(통합실무지원단 단장, 간사, 단원 등)에 이메일 등을 통해 비공개로 안건을 제안하는 경우 → 제안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진행 등을 위해 위원회 간사 또는 통합실무지원단 간사가 제안 안건을 정리하여 안건 제안 게시판에 주기적 게시 적극 고려
- 모든 판사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위원장에게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제안 가능(규칙 제9조 제1항)
- 판사가 이메일 등을 통해 비공개로, 위원회 측에 안건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간사가, 법원행정처 측에 안건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통합실무지원단 간사가 각각 제안된 안건을 정리하여 안건 제안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일선 법관이 어떤 안건이 제안되었는지 알고서 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기타 사항

가. 위원회에 대한 비용 지원

- 정기회 이후 만찬 비용, 비정기 회의 관련 회식비 등 지원함이 상당

나. 회의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역등기국 회의실 : 5/16 & 5/20 모두 이용 가능
- 사법연수원 : 대회의실 5/16 이용 가능, 중회의실 5/16 & 5/20 모두 이용 가능
- 사법행정위원회 의견
 - 재판제도발전위원회 : 5/16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역등기국 회의실 사용
 - 법원문화개선위원회 : 어느 곳을 사용할지 오늘 중 통보 예정(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20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역등기국 회의실 사용할 예정)



사법행정위원회 준비·진행상황 점검

2016. 4. 28.

통합실무지원단

1. 검토 배경

▣ 4. 11. 위원 위촉식 이전 안건 제출 현황

- 일선법관들이 안건을 거의 제출하지 않았음
- 사전에 준비된 안건 중심으로 회의 진행 예상함

▣ 위원 위촉식 이후 다수의 안건 제안

- 위원 위촉식 이후 안건 제출기간 마지막 날인 4. 12. 위원회별 각 20건 이상 안건이 제출됨

▣ 4. 20. 아래와 같이 위원회별 각 5건 안건 회부 ⇨ 사법행정위원회의 향후 준비·진행상황을 점검 및 검토 필요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순번	회부된 안건	약 칭
1	합의부 내부의 바람직한 문화	합의부문화
2	법관의 여가와 휴식을 보장하는 문화	여가/휴식
3	양성 평등을 저해하는 조직문화 개선	양성평등
4	법관의 자존감과 긍지 고취 방안	법관자존감
5	기수나 직위와 관계없이 토론하는 문화	토론문화

[재판제도발전위원회]

순번	회부된 안건	약 칭
1	바람직한 민사재판 심리방식의 정착 - 구술심리 및 쟁점 중심의 집중심리 실현	민사심리방식
2	검증·감정비용의 현실화 등 충실한 검증·감정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	검증감정제도
3	재판부 내 업무 재설계 및 참여관 역할 강화	재판부업무재설계
4	합의부 사물관할 상향 조정	사물관할상향
5	항소심 운영 개선	항소심운영



▣ 당초 예정일정과 현재 진행상황

당초 예정일정 (차장님 보고 기준)	현재 진행상황
~ 4.17. 안건 결정, 주무심의관 확정 사전보고서 작성	~ 4.19. 안건 결정에 관한 위원장 의견 수렴 안건 결정
4.18. 안건 회부 공지 사전보고서 제공	4.20. 안건 회부 공지 사전보고서 제공 X
~ 4.29. 회부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수렴한 의견 실무지원단에 제출	~ 4.29. 회부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연장 요구 있음) 수렴한 의견 실무지원단에 제출 (지연 예상)
~ 5.10. 실무지원단 회의자료 작성 및 제공	
~ 5.15. 위원의 회의자료 검토	
5.16. 1차 회의(상반기 정기회) 개최	5.16. 재판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5.20. 법원문화개선위원회 회의 개최

2. 위원회별 내부 논의

가.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코트넷 커뮤니티 내용 정리)

▣ 1차 회의(상반기 정기회) 논의 방식

- 위원장 최초 제안: 1차 회의에서 2 ~ 3개 안건만 논의
- 일부 위원들 의견: 5가지 안건 모두 논의(필요하면 토요일에도 논의)
- 내부논의 후 도출된 잠정 결론
 - 5개 회부안건 전부에 대한 의견수렴 ⇨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각된 중요 안건을 우선논의
⇨ 논의 과정에서 모든 주제 다루게 될 것임
 - 1차 회의에서 2차 회의에 관하여 논의함

▣ 현재 각 위원들이 법원별로 단체 이메일을 통해 내부 의견 수렴 중임



▣ 위원들의 안전 선호도

- 의견을 밝힌 위원들의 의견만 반영함
 - 1순위(6명): **합의부문화**
 - 2순위(각 5명): **여가/휴식, 토론문화**
 - 4순위(2명): 양성평등

나.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네이버 밴드 내용 정리)

▣ 1차 회의(상반기 정기회) 논의 방식

- 외부안전 중 논의대상이 광범위한 2개 안전(**민사심리방식, 항소심 운영**)
 - 1차 회의에서 대략적인 논의 방향을 잡고 **주된 논의는 2차 회의**에서 함
- 나머지 3개 안전: 1차 회의에서 아래 순서로 논의함
 - **사물관할상향** ⇨ **검증감정제도** ⇨ **재판부업무재설계**

▣ 주무위원 지정

- 4. 27.부터 위원회 내부에서 **안전별 주무위원**을 정하려는 움직임 있음

▣ 위원장의 요구 및 문의사항

- 4. 25. 위원장(김○○ 부장판사)이 밴드를 통해 아래 내용 요구 및 문의
 - 회부안전에 대한 **의견수렴과 의견검토**를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두 기간을 합쳐서 5. 13.까지로** 연장하면 좋겠음
 - 회부안전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기를 희망함
 - 회부안전에 대한 세부주제를 어느 정도 제시해줄 수 있는지 문의



3. 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진행절차

가. 각 위원장과 통합실무지원단장의 면담 실시 (4. 29.)

▣ 위원회와 통합실무지원단의 역할(임무) 명확화

● 각 위원회의 역할(임무)

- 법원문화개선위원회의 1박 2일 회의 여부 확정
- 1차 회의의 **안건별 논의 순서 확정**
- 각 안건별 논의할 **세부 주제 확정**
- 각 안건(세부 주제)에 대한 **의견수렴결과 전달**
- 자료 제공 요청창구는 위원장으로 단일화
- 2차 회의(하반기 회의)에서는 필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의결

● 통합실무지원단의 역할(임무)

- 확정된 일정에 따른 **장소 예약**(1박 2일의 경우 사법연수원과 협의)
- 안건별 세부 주제에 관한 **기초 보고서 제공**
- **회부안건에 대한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하여 회의자료 작성·제공**
-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의 제공

▣ 향후 위원회 진행 일정에 관한 의견 조율, 확정

나. 위원회의 안건 논의순서, 안건별 세부 주제 제시 (5. 4.까지)

▣ 안건 논의순서 및 안건별 세부 주제 확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필수적 요건임

- 안건 논의순서와 안건별 세부 주제도 확정하지 않고 **난상토론을 하는 것은 곤란**



▣ **처장님께서 위원회에 5개의 안건을 회부 ⇨ 위원회에서 세부 주제 확정**

- 위원회가 세부 주제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위원회의 안건별 의견수렴 결과 제출 (회의 전까지 수시 제출)**

▣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은 세부 주제가 확정되어야 본격화될 수 있음

▣ 5. 4.까지 안건 논의순서, 세부 주제 확정 ⇨ 회의 전까지 의견수렴, 제출

라. **통합실무지원단의 안건에 대한 기초 보고서 작성 및 제공 (5. 9.까지)**

▣ 위원회의 안건 논의순서, 세부 주제 확정 ⇨ 비로소 기초 보고서 작성 가능

▣ **선순위 안건, 세부 주제가 구체적인 안건** ⇨ 상세한 기초 보고서
후순위 안건, 세부 주제가 불특정인 안건 ⇨ 개략적인 기초 보고서

▣ **재판제도발전위원회의 보고서가 보다 상세할 필요 있음**

▣ 위원장을 통한 자료 제공 요구시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

마. **통합실무지원단의 회의자료 작성 및 제공 (5. 13.까지)**

▣ 기초 보고서 + 수렴된 의견 ⇨ 최종 회의자료 작성

▣ **재판제도발전위원회**

- 1차 회의가 5. 16. 개최예정. 따라서 회의자료가 5. 13.에 제공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음

- 그러나 **기초 보고서가 1차적인 회의자료 역할**을 하므로 큰 문제없음

▣ **법원문화개선위원회**

- 1차 회의가 5. 20. 개최되고, 법원문화개선위원회의 경우 의견수렴 결과가 갖는 비중이 보다 큼. 따라서 **필요한 경우 회의자료 작성 및 제공**시



기를 5. 17.까지로 연장하는 것도 가능 <끝>

사법행정위원회 성과 분석 및 향후 운영 방안

1. 검토 배경

- [2015년 하반기] 사법행정위원회 설립 TF 활동
- [2016년] 사법행정위원회 설립에 관한 규칙 신설 ⇨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발족 및 운영
 - 2016. 12. 5.(월)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 2차 정기회 개최 예정 ⇨ 건의문 채택 후 2016년 활동은 일부 후속 조치 제외하고 사실상 마무리됨
 - ▣ [일부 후속 조치] (예) 법원문화개선위원회는 건의문에 채택된 내용을 토대로 ‘바람직한 합의부 운영에 관한 책자’ 등을 발간할 예정
- 출범 첫 해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후 향후 운영 및 발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① 2016년도 사법행정위원회 운영 성과 분석
 - ② 2017년도 운영 계획 검토 ⇨ ③ 정책 결정 필요 사항 추출 및 분석

2. 검토 필요 사항

▣ 2016년도 사법행정위원회 운영 성과 분석

- [성과 분석 기준]
 - ① 사법행정에 대한 법관들의 참여도 제고 여부 및 정도
 - ▣ [객관적 측면] 실제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도가 제고되었는지 여부
 - ▣ [주관적 측면] 법관들이 사법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제고되었다고 체감하고 있는지 여부

- ② 사법행정위원회 논의 결과가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 각 위원회의 논의 안건별로 구체적 분석 필요

▣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사법정책기획위원회 출범 여부**

- [법관윤리심의위원회] 법관윤리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이미 포함
 - ☞ 조기 발족 필요
- [사법정책기획위원회] 신임 CJ 취임에 대비한 사법정책 구상등과 연계하여 검토 필요함
 - ☞ 출범 시기에 대한 신중 검토 필요

▣ **既 출범한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검토**

- [원칙] 임기 1년 ☞ 1년 연임 가능
 - 인사이동으로 소속 법원 변경될 경우에 대비한 규정
- 위원장 ☞ 연임 필요
 - 위원장의 위상은 특정 법원 대표에 한정되지 않음
- 위원
 - 인사이동 가능성 있는 위원 명단 추출 ☞ 후임자 사전 검토

▣ **각 위원회별 2017년도 운영계획 수립**

- 기초 검토 ⇨ 실무지원단
 - 실무지원단에서 기초 검토한 후 각 위원회에 전체적인 방향성 제시
- 의사결정 ⇨ 각 위원회
 - 실무지원단의 제안을 바탕으로 각 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결정
- 운영계획에 포함될 사항
 - ① 논의 주제
 - ② 회의 개최 시점 <끝>

이판사판 야단법석 관련 차장님 말씀

-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장님이 홍○○ 판사와 면담을 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분위기가 좋았음
- 원장님께서서는 익명카페의 순기능도 있겠지만, 익명카페의 존재 자체 또는 글의 내용이 노출될 경우 법원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홍○○ 판사에게 잘 설명하였음
- 홍○○ 판사 또한 회원수가 450명에 이르러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음
- 원장님께서서는 이사야 카페 게시글에 펌방지 또는 복사방지기능 탑재,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글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 등을 홍○○ 판사에게 제안하였으나, 홍○○ 판사는 자신은 카페 운영자에 불과하므로, 전체 회원들의 의견 수렴 후 향후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 원장님은 필요한 경우 전산실 직원을 통하여 카페 운영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음
- 홍○○ 판사는 원장님께 코트넷 익명 게시판 활용이 가능하면 좋겠다고 건의하였으나, 코트넷 익명 게시판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 홍○○ 판사는 각종 기술적 조치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나, 본인 스스로가 기술적 조치 사용 내지 카페의 폐쇄를 원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홍○○ 판사가 카페에 올리는 공지 글의 내용이 약할 우려가 있음 ⇨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행정처에서 공지글을 작성하여 주면 원장님께서 홍○○ 판사에게 전달할 예정임
- 차장님 지시사항: 인천지방법원장님이 홍○○ 판사에게 전달할 공지글을 작성하여 볼 것(제목은 “홍○○ 판사와 인천지방법원장 면담 결과와 향후 조치” 등 적절하게 붙일 것)



상고법원 관련 법관 인식 점검

2015. 7.

기획조성실

■ 인식 현황 파악 방법 ⇨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을 중점 대상으로 함

- ① 법관 전용 익명 인터넷 게시판 ⇨ 진솔한 목소리 등 정확한 여론 수렴
- ② 기획법관 등을 통한 현황 및 법관 여론 취합 ⇨ 폭넓은 현황 및 기수·경력 등을 고려한 분석가능한 현황 파악
- ③ 홍보 리스타트 팀원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수집 ⇨ 문제의식에 기반한 현황 파악

■ 전반적 인식 현황 개관

● 상반기보다 관심도와 정보 수준 향상

- ① 주요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 + ② 법원장, 수석부장 등이 티타임, 만찬, 판사회의, 법관 워크샵 등 다양한 자리에서 상고법원 정보 제공
- ⇨ 관심도의 발현으로 코트넷 상고법원 게시판 중 ‘상고법원 관련 법안 심사 일정 안내’ 게시물의 조회수가 1,720회, 주요 언론보도 게시물이 1,301회, 국회 공청회 자료집 게시물이 820회에 달함¹⁾

다만 여전히 일부 기획법관 조차 ‘솔직히 판사들이 별 관심 없고, 통과 가능성에는 더욱 회의적이다’ 라고 언급 ⇨ 관심도와 지지도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수준은 아님

- 법관들의 주요 관심사항은 인사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고 있음 ⇨ 심급제도, 사실심 충실화와의 관계, 사법부 위상 강화 등의 관점에 대하여는 언급 많지 않음
- 상고법원 도입의 불가피성에 대하여는 공감대 확산

1) 중복 제외한 수치로서 일반적 포함되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수치임



무관심하던 판사들 사이에 관심도가 제고됨 ⇨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법관도 생김

처음부터 반대의견을 가졌던 판사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설득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다만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는 분위기 조성

- 직급별·계층별 관심도의 편차 여전히 큼

부장판사 이상 및 대법원 또는 상고법원 연구관 선발 대상 기수 판사들의 상당한 관심도 vs 배석판사들의 낮은 관심도

- 주된 반대 의견

- ▶ 판사들 의견수렴 절차 없이 행정처에서 다 정해놓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 하였다.
- ▶ 상고사건이 많고, 상고심 심리부담이 큰 것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사실인정에 개입하였기 때문인데**, 상고법원 설치되면 상고심 강화한다면서 우수한 자원을 상고법원 판사 또는 재판연구관으로 대거 데려갈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하급심에 대한 불신으로 상고심의 파기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법관 익명 게시판에서 크게 호응을 얻음)
- ▶ 높은 분들에게만 좋고, 평판사들에게는 좋은 점 없어 보인다.
- ▶ (특히 단독판사를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승진 대상 보직을 만들면 법관 관료화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

■ 구체적 인식

- 기대감을 갖는 판사들 ⇨ 상반기 6월 국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언론, 기획법관 등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 주요 언론에서 갑자기 상고법원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보도하는데, 대법원에서 언론과 무슨 딜을 한 것이냐
- 상고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사유로 정한 ‘헌법위반, 관례위반’ 등은 주장하기 나름이어서 결국 어정쩡한 4심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 판사회의에서 법원장에게 ‘사실심 충실화와 상고법원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고 묻기도 함
- 상고법원에서 심사할 사건과 대법원에서 심사할 사건의 구분이 여전히



모호하고 애매하다

- 필요성은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통과가 되겠느냐
 - 직관적으로 수궁이 되는 대법관 증원론과 상고허가제에 비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법원이 상고법원에 올인한다고 계속 쓰는 것이 부담스럽고, 놀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 사법행정라인을 중심으로 상고법원 이야기만 하는 것에 솔직히 반감이 든다
 - 헌법재판소에 밀리지 않고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단순히 업무량 때문만이라면 이와 같이 올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차라리 법관들에게 현재 등과의 관계에서 사법부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니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이 공감대를 얻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판사들이 법원 조직 자체에 대한 애정은 있다
 - 당장 와 닿지 않는 상고심 개선보다는 변형 및 각 변회의 대립, 순회 재판 제도 도입 아이디어 등이 흥미롭다
 - 대법원장 인사권이 집중되는 것에 비판적인 법관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렇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낼 수 있는 것 아니냐
 - 법률안 발의 당시 각 법원장 및 행정처 간부들이 의원들에게 사실상 입법청탁을 한 것으로 보여 불쾌했는데, 지금은 다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 대법원의 인사권, 통제권 강화, 상고법원의 우수인력 독점 등 사법부 전체로 보아 상충부의 비대화가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문이다
-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 확정 가부 ⇨ 아직까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움.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내심으로 모두 찬성한다는 취지로 단정하**



기 어려움

- 현 단계에서는 적극 반대 내지 무관심 법관이 크게 감소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어 보임
- 일선 법관들이 상고법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하여는 ①법관 개개인에게 줄 장점, ②(대법원장님 개인이 아닌) 사법부 위상 강화, ③국민에게 주는 장점 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 심정적 결속감은 물론, 상고법원 좌절시 사법부 위상추락으로 이어진다는 위기감까지 공유되어야 할 것임



합의부 중심 조직문화 리빌딩 방안

-중요 사법정책 추진기의 법원 조직문화 점검과 그 혁신 방안 검토-

2018. 7. 31.

법원행정처

I. 검토 배경

- ▣ 젊은 법관을 중심으로 법원 조직 문화에 대한 갈등·불만이 상당함
 - 최근 각급 법원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고법원 간담회에서 많은 불만·건의 사항이 제기되었음
- ▣ 특히 최근 이○○ 판사 사망 사고 이후로 젊은 법관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
 - 불만의 목소리가 법원 조직문화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다소 우려스러움

☑ Daum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게시판 중 "이○○ 판사님의 죽음을 보며..."라는 글에 달린 댓글 중 일부

- ▶ "다 같은 판사인데 상급자 스트레스나, 헌법상 독립된 기관인데 내부 경쟁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는 전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그런 걸 판사들이 느낀다는 게 이 조직에 문제가 쌓여간다는 의미 아닐까요?"
- ▶ "최근 수년간 과거와 달리 사법행정권이 지나치게 중앙집권화, 비대화, 권력화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힘의 균형을 맞추려면 판사회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역할과 유사하게요. 판사회의 관련 제반 법 규정과 내규를 숙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고법원, 고등부장 제도 부활과 같은 중대 사안 추진 시 판사회의와 관련이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 갈등·불만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불만을 즉시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근본적 처방을 함께 검토함
 - 특히 올 하반기는 사법부의 역량이 최대한 집중되어야 할 시기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II.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무엇보다 지방법원 배석판사들의 부장판사의 합의부 운영 내지 합의부 조직 문화에 대한 갈등·불만이 강함
 - 2014년 법원문화연구반 운영 결과, 최근 실시된 각급 법원 상고법원 간담회 결과 등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극명하게 현출됨
 -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상명하달식 사법행정 추진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나, 그것보다 불만 등의 구체성·強度 등에서 합의부 조직 문화에 대한 갈등·불만이 더욱 심각한 정도인 것으로 보임
 - ‘부장관 식사도 하기 싫다’ 라는 식의 노골적 불만 표출 사례가 많음

2. 문제점

- 왜 중차대한 이 시기에 이러한 갈등·불만이 제기·심화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법관의 life cycle 중 지방법원 배석판사 보임 기간이 가장 고단한 시기임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님
 - [理想]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인 업무 수행 희망 vs. [現實] 업무 노하우와 인생 경험 부족으로 인한 도제식 재판부 구성·운영 불가피
 - 그러나 과거보다 갈등·불만이 지나치게 심화되는 것은 이상 징후에 해당함 ⇨ 심각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주위 깊게 관찰이 필요 함
- 특히 특정 재판부·법관의 문제가 아니라면, 현재 법원조직의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인을 분석해야 함
 - 단순히 특정 재판부나 법관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 지방법원 부장판사 주력 기수인 23~29기 법관과 배석판사 주력 기수인 36~42기 법관이 유별나게 문제가 많은 집단일 수도 없음 ⇨ 단순히 부장 vs.



배석의 전통적·미시적 문제가 아님을 시사

☑ 이른바 '신세대 법관'의 가치관 변화가 주된 원인?

▶ '신세대 법관'의 가치관 변화의 내용

- 개인주의적 성향의 증대 ⇨ '국가'나 '사회' 등 '공적인 영역'보다 '개인'을 우선 시하고 개인에게 구체적인 이익·불이익이 발생하는 분야에만 관심
- 일 보다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확산 ⇨ 가정생활이나 여가 생활에 매우 큰 관심

▶ 이와 같은 가치관 변화도 합의부 중심의 조직 문화에 대한 불만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전통적 의미의 합의부 중심 조직 문화는 새로운 가치관과 상충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함

▶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특히 '왜 바로 지금 이러한 불만·갈등이 심화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부족함

- 조직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라면 현상은 '합의부 조직 문화의 갈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도 실질은 조직 전체의 갈등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 극단적인 확대해석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조직의 위기 진단과 예방을 위해 때로는 적극적인 분석이 필요함 ⇨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전제로 검토하기로 함



III. 원인 분석

<p>☑ 개요 ⇨ 중요 사법정책 추진기에 법원 조직에 전반적으로 만연한 갈등이 가장 약한 고리인 지방법원 배석판사 계층을 통하여 발현되고 있는 것</p> <p>▶ 근본적 원인 ⇨ 사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중요 사법정책의 중점 추진 과정에서 비롯된 정보·비전 공유 부족으로 인한 이해도 부족과 불안감 증폭</p> <p>▶ 현상적 원인 ⇨ 그 과정에서 가장 지위가 불안정하고 피해의식이 큰 지방법원 배석판사 집단이, 가장 전형적인 스트레스 요인인 합의부 조직 체계에 대한 불만을, 익숙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확대 재생산·표출함</p>

1. 근본적 원인

- **현재 법관 사회에서 상고법원 추진을 비롯한 중요 사법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과 그로 인한 오해는 심각한 정도에 이름**

중요 사법정책	오해의 대표적인 내용
상고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 법관의 승진 적체 해소만을 위한 정책임 - 30기 이하 법관의 상당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과거 고등법원 배석판사보다 더욱 근무 강도가 높은 상고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되어 고생하게 될 것임 - 특히 모든 상고심 판결문이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게 될 것이므로 그 업무 강도는 어마어마할 것임 - 현재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에 올인함으로 인하여 법관의 복지 개선 사업은 모두 중단되었음
사실심 충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과 법관 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사실심 충실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스란히 법관의 희생이 초래됨 - 각종 통계 수치 분석을 통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임 - 대법원은 법관 정원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법조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석판사 보임 기간은 더욱 장기화될 것이고, 특히 기수가 낮아질수록 길어져 이른바 '평생 배석'도 각오해야 할 것임 - 오랜 배석판사 보임 기간을 거쳐봤자 나중에 동년배들이 5년 또는 10년 법조 경력 법관으로 임용되었을 때에 특별히 유리한 처우를 받지도 못할 것임
평생법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처우 개선이 없는 가운데 내부 경쟁만 가열될 것임 - 승진하지 못하여 낙오자로 인식되지 않기 위하여 조직에 순응할 수밖에 없음
인사제도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 평정의 원칙·기준에 대한 불신 - 각급법원 내에서 사무분담 결정의 원칙·기준에 대한 불신



● 이는 부장판사, 단독판사, 배석판사를 막론하고 전 세대의 법관에 공통된 현상임

- 법관 사회의 관심 부족에도 상당 부분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의 법관들은 사법행정 당국의 정보 공유 노력이 부족했다고 여기고 있음

▣ 특히 극단적이고 선정적인 비관론일수록 더욱 득세하는 형국임

● 또한 자연스레 왜곡·오해는 사법부의 역사·정책·문화 등에 관한 지식이 일천한 젊은 법관, 특히 배석판사들 사이에서 더욱 심각함

- ‘평생 배석’ 등의 낭설이 그러한 예임
- 특히 상고법원 추진에 관해서는 ‘상고법원은 절대악’이라는 식의 극단적인 반대론이 지지세를 확대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

▣ 미래에 대한 비관론은 법관 스스로의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귀결되고 있음

● 전반적인 법관 사회의 불안감과 불만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한 고리인 지방법원 배석판사들을 통하여 표출됨

☑ 문제의 심각성

▶ 이와 같은 상황은 상고법원 등 **중요 사법정책 추진의 결정적 시기에 돌발적인 부정적 변수로 기능하게 될 수 있어 더욱 문제임**

- **최근에도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한 某판사의 코트넷 게시 제언이 언론에 의하여 ‘현직 법관 상고법원안 반대’라는 식으로 매도되고 있음**
- 건전하고 건설적인 관심과 의도에서 출발한 의견 표명이라도 **정보 부족과 오해로 말미암아 오히려 정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법원의 사법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 불신 풍조로 자리 잡게 될 우려도 있음**

- 특히 과거 사법정책에 대한 주요 비판이 단독판사와 소장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한 비교적 이성적인 접근이었던 데에 비하여, 현재에는 **배석판사를 중심으로 한 감성적인 접근에 치우치고 있음** ⇒ 무조건적인 무관심·불신·반대가 만연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됨



2. 현상적 원인

가. [약한고리①] 주체 ⇨ 지방법원 배석판사

- 불만은 부장판사, 단독판사, 배석판사를 비롯한 전 세대 법관들에게 공통되어 있으나, 특히 배석판사들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밀접한 이해관계와 직접적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음

주요 사법정책	오해의 대표적인 내용	피해 의식을 가지는 계층
상고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 법관의 승진 적체 해소만을 위한 정책임 - 30기 이하 법관의 상당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과거 고등법원 배석판사보다 더욱 근무 강도가 높은 상고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되어 고생하게 될 것임 - 특히 모든 상고심 판결문이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게 될 것이므로 그 업무 강도는 어마어마할 것임 - 현재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에 올인함으로 인하여 법관의 복지 개선 사업은 모두 중단되었음 	단독판사·배석판사
사실심 충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과 법관 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사실심 충실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스란히 법관의 희생이 초래될 것임 - 각종 통계 수치 분석을 통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임 - 대법원은 법관 정원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부장판사·단독판사 ·배석판사
법조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석판사 보임 기간은 더욱 장기화될 것이고, 특히 기수가 낮아질수록 길어져 이른바 '평생 배석'도 각오해야 할 것임 - 오랜 배석판사 보임 기간을 거쳐봤자 나중에 동년배들이 5년 또는 10년 법조 경력 법관으로 임용되었을 때 특별히 유리한 처우를 받지도 못할 것임 	배석판사
평생법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처우 개선이 없는 가운데 내부 경쟁만 가열될 것임 - 승진하지 못하여 낙오자로 인식되지 않기 위하여 조직에 순응할 수밖에 없음 	부장판사·단독판사 ·배석판사
인사제도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 평정의 원칙·기준에 대한 불신 - 각급법원 내에서 사무분담 결정의 원칙·기준에 대한 불신 	부장판사·단독판사 ·배석판사

- 배석판사 계층은 부장판사와 단독판사 계층에 비하여 이러한 **스트레스의 분출구·해소책도 부족함**

- 결국 사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중요 사법정책의 중점 추진 과정에서 비롯된 정보·비전 공유 부족으로 인한 오해, 불안감은 배석판사 계층에서 가장 누적·응축될 수밖에 없음

☑ 온라인을 통한 정보 확산력

- ▶ 한편, 지방법원 배석판사 계층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 공유·확산 속도가 매우 빠름 ⇨ 불만과 문제 제기가 이를 통하여 빠르게 공유되고 때로는 시너지 효과, 군중심리를 수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나. [약한고리②] 시기 ⇨ **중요 사법정책 중점 추진 + 사망 사고 발생**

▣ **중요 사법정책, 특히 상고법원 추진으로 인하여 **각급 법원 법관들의 소외감도 고조되고 있는 시기임****

- 법관들은 '지금은 대법원이 법관 처우 개선에서 손을 뗀 시기'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음

-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상고법원과 사실심 충실화가 법관 처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오해마저 가지고 있음 ⇨ 중요 사법정책 중점 추진이 그 정점에 달할수록 법관 사회의 동요는 더욱 심해질 것임

▣ **특히 지방법원 배석판사들은 '처우 개선의 지체'를 걱정하고, 더 나아가 '정책 자체의 부재'를 의심하기에 이르렀음**

- 특히 최근 로스쿨 출신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 관한 논란 과정은 이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한 번 더 고민하게 하였음 ⇨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아무런 개선이 없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불만을 더욱 적극적으로 외부로 표출하게 하고 있음

☑ Daum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게시판 중 "사시와 로스쿨, 존재에 대한 자각"이라는 글에 달린 댓글 중 일부

- ▶ "30대 후반 기수로서 부품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 ▶ "기록 안 보는 부장님, 계속 위로만 들어오는 신규 법관, 끝이 안 보이는 배석 생활. 솔직히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방문 잠그고 하는 일에 손도 꼼짝 안 하는 부장님 보면 내가 이 짓을 도대체 몇 년이나 더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뭐, 들어오려는 사람 많으니까 불만이면 나가면 되겠조? **아마 행정처나 윗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지금 저희들 기수에 그리 무관심하신 거겠조.** 배석이라 우리의 불만과 고통이 당장의 재판 등 성과와는 아무 관련 없고 새로운 부품이 무한대기 중이니깐요."

▣ **설상가상격으로 최근 몇 차례 안타까운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법관 사회의 **심리적 동요**가 심해지게 됨**

- 서울남부지법 이○○ 판사 사망 사고



- 서울중앙지법 일부 판사 말기 폐암, 뇌출혈 등 건강 이상 사례 발생

다. [약한고리③] 조직 ⇨ 합의부 조직

- ▣ 배석판사들이 그 구체적 표출 대상을 '합의부' 또는 '부장판사' 자체로 삼게 되는 이유는 **배석 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불만 때문임

- 이른바 '평생 배석'이 아니더라도 '최소 7년 배석'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배석판사로 하여금 '합의부' 또는 '부장판사' 자체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가지기 어렵게 하고 있음

- ▣ 특히 '합의부' 조직은 **전근대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쉬움**

- 다수 사기업들이 수평적 조직 체계를 갖추고 호칭을 일원화하는 등 조직 문화 개선에 주력하는 데에 비하여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임

☑ 2015. 8. 17.자 시사위크 "[기업문화의 변신] 자유로운 '호칭'부터 이색적인 '사내 모임'까지... '눈길'"

▶ 신세계그룹은 올해부터 직원 호칭을 '파트너'로 통일했다. 기존 '사원-주임-대리-과장-부장-수석부장' 등 6단계이던 직급 체계를 S4, S3, S2, S1(가칭) 4단계로 축소하고, 직원들의 외부 호칭은 모두 파트너로 통일했다. 파트너라는 호칭 통일은 대외적으로는 상생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내부적으로는 수평적이고 창의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 이 외에도 다음카카오는 전 직원이 영어 이름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 호칭에서 "~님"이라는 표현조차 제거하기 위한 시도임)

- 업무 공동체 단위로서 뿐만 아니라 생활공동체 단위로서 기능하고 있는 '합의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함

- ▣ 한편, 현 상황에 대한 **개선 부담을 '부장판사'라는 구성원에게만 돌리는 것은 무리일 수 있음**

- 현재 부장판사들도 '신세대 법관'과 함께 바람직한 재판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이제는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시기

- 그와 함께 '부장판사 리더십(2014년 정책연구용역)' 교육으로 보완할 필요



IV. 대응 방안

☑ 개요 ⇨ 근본적 원인과 현상적 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두 실시함

▶ 현상적 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 ⇨ 합의부 중심의 조직 문화 리빌딩

① 합의부의 생활공동체 기능 재편

② 자율출퇴근제 실시를 통한 스마트한 합의부 근무 환경 모색

▶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 ⇨ 중요 사법정책 비전 공유 강화

① 중요 사법정책에 대한 적극적 정보 전달 실시

② 하반기에 시범 실시 가능한 아이টে을 포함한 법관 복지 개선 마스터플랜 공표

③ 법원문화개선TFT 가동

1. 합의부의 생활공동체 기능 재편

가. 개요

▣ 1개의 합의부가 **폐쇄적 생활공동체**가 되는 것을 **지양함**

- 특히 이른바 '밥조' 재편성을 통하여 좀 더 개방적인 생활공동체 단위로 확대·전환을 꾀함

나. 문제의식

▣ 합의부 조직이 **수직적 갈등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된 이유

- ① 구성원 간에 직급 차이가 심함 ⇨ 갈등 발생의 소지가 큼
 - 신규 세대 간 차이도 쉽게 발생할 수 있음
- ② 구성원의 숫자가 매우 소수임 ⇨ 갈등 해소의 여지가 작음
 - 특히 과거보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을 모두 포용하기 어려움

▣ 하지만 합의부는 바람직한 재판을 위한 이상적인 업무 단위로서 **절대 해체되거나 형해화되어서는 안 됨**

- 형태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최근 대다수 사기업에서 부서제 조직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팀제 조직에 가까움



- 이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민주적이고 소통 친화적인 조직일 수 있음
-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합의제 재판을 위해서 합의부의 업무 공동체 기능은 잘 유지·보존되어야 함
- ▣ 합의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폐쇄적인 합의부 조직을 **좀 더 개방적인 조직으로 과감히 재편해야 함**
- 발전적 해체에 가까운 기능 재편만이 오히려 합의부 중심의 조직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길임 ⇨ 업무 공동체로서의 재판부를 해체·재편성할 수는 없으므로 생활공동체로서의 재판부를 재편하는 방법을 모색

다. 구체적 내용

- ▣ **2~3개의 합의부가 하나의 생활공동체의 단위가 되도록 재편성**
- 재판 요일 또는 사무 분담이 유사한 2~3개 재판부가 하나의 '밥조'를 이루도록 유도함
- 다만, 전면적으로 식사를 자유롭게 하는 것(합의부가 전혀 식사를 같이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은 합의부 조직의 형해화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지양
- ▣ **각급 법원 법원장 또는 수석부장이 적극적으로 권유·유도함**
- 초기에는 부장판사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부장판사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 지나치게 사소한 문제에 대한 사법행정의 개입이 아닌지?

- ▶ 지방법원 배석판사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음 ⇨ 배석판사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접근할 필요가 있음
- ▶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간의 문제이므로 적극적인 유도·설득 없이는 쉽게 변화하기 어려움
- ▶ [유사 사례] 최근 배석판사의 사건 메모 작성·납품 문제 ⇨ 대법원장님께서 직접 적극적인 견해를 수차례 표명하여 관행이 개선된 바 있음 ⇨ 오래된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오히려 탑다운(top down) 방식의 적극적 개입도 필요



라. 기대 효과

- **좀 더 수평적이고 넓은 범위의 소통**을 이룰 수 있어 합의부에 내재된 **갈등·긴장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음**
 - 특히 다수의 재판부가 함께 소통하다보면 서로간의 근무 여건의 공공연한 비교를 통하여 배석판사 근무 여건의 상향평준화도 꾀할 수 있음
 - 부수적으로는 배석판사들이 식사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개인적 약속 등에 활용할 수도 있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임
- **실시 초기에는 부장판사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으나 부장판사의 입장에서**도 여러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
 - 합의부 운영을 위하여 부장판사들이 투여하는 노력·부담도 절약

2. 자율출퇴근제 실시를 통한 스마트한 합의부 근무 환경 모색

가. 개요

- **자율출퇴근제를 합의부 운영에 시범 실시**
 - 현재 행정자치부 등에서 실시 중이고 사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자율출퇴근제(=유연근무제, 탄력적출퇴근제)를 합의부 운영에 도입하여 **배석판사의 업무상 스트레스 저감**을 꾀함

나. 문제의식

- **업무 공동체로서의 합의부 조직의 본질은 '팀 형태의 공동 작업'이지만, 불필요한 부담은 최소화하는 스마트 근무 환경 모색이 필요**
 - 특히 배석판사들의 불만 중 상당수는 '무의미한 야근'임 ⇨ 보다 적극·긍정적으로 근무 시간과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



▣ 특히 배석판사들에게 **조기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즉시 시범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스마트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한 여러 정책 중 자율출퇴근 제도가 조 기 시범 실시에 가장 적당함

- [cf①] 시간제 근무 ⇨ 인력 수급에 관한 치밀한 사전 시뮬레이션 필요
- [cf②] 원격 근무(스마트 오피스) ⇨ 물적 설비 완비와 부작용 여부에 관한 사전 검토 필요

- 이미 다수 사기업, 행정자치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부작용이 나 외부 비판의 우려가 적음

☑ 2015. 4. 10.자 서울신문 “행자부, 20일부터 자율출퇴근제 시범 실시”

▶ “행정자치부는 출퇴근 시간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출퇴근제를 20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도 근무시간 선택제가 담겨 있지만, 지금까지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되, 공무원이 신청하면 유연근무를 허가하고 이를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행자부는 우선 기획조정실 소속 창조행정담당관실과 정보통계담당관실,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다른 부서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다. 구체적 내용

▣ 하반기 중 **임신 법관 근무 재판부부터 시범 실시**

- 각 지방법원 별로 1개 재판부에 시범 실시 ⇨ 홍보 효과 극대화, 특히 여성 법관에 대한 홍보 효과가 상당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가동 중인 TFT에서 검토
 - [합의부 운영의 효율성 확보] 매일 일정한 시간(ex. 오전 10시~오후 4시) 또는 합의부에서 합의나 판결문 초안 수정에 필요한 특정한 시간을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재실 근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확보 가능

▣ 후술하는 **법관 복지 개선 마스터플랜과 함께 적극 홍보**



라. 기대 효과

- ▣ 시범 실시만으로도 배석판사들에게 주는 **긍정적 메시지와 비전은 상당할 것으로 보임**
 - 스마트 근무 환경 구축 추진을 포함한 법관 복지 개선 마스터플랜을 함께 제시
- ▣ 합의부 근무로 인한 실질적 스트레스를 저감하여 **합의부 근무 장기화에 대한 거부감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여성 배석판사들의 육아·가사 고민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음

3. 중요 사법정책에 대한 적극적 정보 전달 실시

가. 개요

- ▣ 중요 사법정책에 관하여 각급 법원 법관들과 **정확한 정보 공유**
 - 시중에 만연한 오해에 관한 적극적 해소 추진

나. 문제의식

- ▣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지만 경시되어서는 아니 됨
 - 여러 갈등 양상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방안임 ⇨ 최우선순위로 추진되어야 함

다. 구체적 내용

- ▣ **특히 주요 인사정책에 관한 적극적인 온라인 설명 필요**
 - 지방법원 배석판사들의 최대관심사인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의 인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설명 필요
 - 최근 로스쿨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 관한 안내 말씀과 같은 형태로 주요 오해 내용에 관한 Q&A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상고법원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오프라인 설명 필요

- 최근 각급 법원 법관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를 통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지속적인 설명 필요
- (역량이 허용한다면) 각 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일과 시간 중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있음

라. 기대 효과

▣ 중요 사법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 오해 해소

- 중점 추진 시기에 원활한 정책 추진·입법 활동 가능

4. 하반기에 시범 실시 가능한 아이টে을 포함한 법관 복지 개선 마스터플랜 공표

가. 개요

▣ 법관에 대한 복지 개선 마스터플랜을 코트넷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표

- 올 하반기에 실시 가능한 아이টে을 포함시켜서 가시적인 실천 의지를 표명하여야 함

나. 문제의식

▣ 현재 법관들의 가장 중요한 불만의 원인은 법관 처우 개선이 뒷전에 밀려나 있다는 오해임 ⇨ 법관 복지 개선에 관한 강력한 정책 추진·실천 의지를 實證할 수 있는 카드 제시가 필요한 시점임

- 반드시 장래에 준비하고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최근 1~2년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정책도 포함시켜 오해를 불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내용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 있음



다. 구체적 내용

- ▣ 올 하반기에 즉각 실시 가능한 아이টে을 전면예 내세우고 이미 실시된 것과 앞으로 실시될 것을 마스터플랜 형식으로 공표
- 즉각 실시 가능한 아이টে은 앞서 언급한 자율출퇴근제 시범 실시가 적당함

라. 기대 효과

- ▣ 법관 복지 개선 정책의 공백에 대한 불만·불안감 해소

5. 법원문화개선TFT 가동

가. 개요

- ▣ **각급 법원 법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함께 참여하는 TFT 가동**
- 법관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 입안 추진

나. 문제의식

- ▣ 지난 7월부터 **제3기 법원문화연구반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파급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음** ⇨ 최근 이○○ 판사 사망 사고 발생 이후 법관 사회의 심리적 동요를 다독일 좀 더 **적극적 제스처 필요**
- 2013년 법원직원 사망 사고 발생 직후 근무환경개선위원회를 개최한 경험 ⇨ 적극적인 여론 수습을 도모

다. 구체적 내용

- ▣ **구성**
- 법원행정처 심의관, 각급 법원 단독·배석판사, 법원문화연구반원 등
- 특히 각급 법원 법관은 해당 법원 법관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여론 형성력이 강한 인사로 선정하여 TFT 논의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법관은 사건 배당에서 배려하는 등 지원 조치를 취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함

▣ TFT 주요 활동

● [1단계] 개선 의견에 대한 검토 보고 및 토론

- 담당 실국별 주무 심의관 해당 과제 검토 ⇨ 과제성격에 따라 관련 실국과 협의 및 보완
- TFT 발제 및 토론 ⇨ TFT 1차 개선 방안 수립

● [2단계] 법원 내부 의견 수렴

- 설문조사 등을 통해 법원 내부 의견 수렴 및 피드백

● [3단계] 정책 추진 로드맵 및 세부 시행 방안 확정

- 최종 제도 개선 방안 도출

라. 기대 효과

▣ 법관 사회의 심리적 동요 방지·안정 확보 [끝]



최근 법관 여론 동향 관련 대응 방안

2015. 8. 22.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최근 일선 법관들의 대법원, 행정처에 대한 불만 고조
 - 상고법원 총력추진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피로감 내지 반감
 - 언론의 연이은 사법부 비판 기사 및 칼럼의 영향
 - 경력법관 임용 관련 논란 등 인사 변화 관련 정보 소외감
 - 배석기간 장기화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 과중한 업무량에 대하여 행정처가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
 - 故 이○○ 판사 사망으로 불만 분위기 더욱 악화
- ①일선 법관들의 전반적인 여론 현황을 점검한 후 ②이에 대하여 오해를 불식시키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방안 검토 필요

2. 법관들 여론 현황

- 현황 파악 방법
 - 전국 순회 비공식 간담회 발언 및 분위기
 - 인터넷 법관 익명 카페 게시글
 - 심의관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일선 여론 확인
- 최근 3개월간 법관들 여론에 영향 미친 주요 사건과 법관들의 반응
 - 5월 박○○ 대법관 임명 전까지는 박대법관 임명제청의 적정성, 차○○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 거부 등 소수 이슈 중심으로 일부 여론 ⇨ 그후 각종 사건 및 외부 비판 잇따르면서 다양한 여론 분출

- ▶ 5. 27. 경력법관 선발시 국정원 신원조사 파문 ⇨ 참담함. 행정처가 면접 통한 사상검증 목인 의심(SBS 취재파일 박○○ 관련) ⇨ 6. 3. 법원행정처 공지글에 대하여 미흡 vs. 늦었지만 다행으로 여론 갈림
- ▶ 6. 20. '귀족판사의 시대가 왔다'(경향 이○○) ⇨ 로스쿨 출신 법관 선발과정 및 8개월 연수 등에 30 후반 기수 법관들 강한 반감, 그 외 기수도 법관 임용 방식 변경 관련 정보 소외감 ⇨ 그 후 행정처 Q&A 등 공지글에도 불구하고 반발 기류 상당함, 30 후반 기수 법관들의 배석기간 장기화, 업무량 과중에 대한 불만 등과 결합하여 표출되기 때문임 ⇨ 7. 1. 신임 법관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고발, 7. 12. 변호사 1천 여명의 사퇴 촉구 광고 등으로 여진 계속
- ▶ 7. 7.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사법제도연구 소모임' 결성 제안 ⇨ 현재의 사법 행정(내용 및 주체 등)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공개적 활동 시도
- ▶ 7. 16. 원세훈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았다는 비판 기사 + 8. 5. '욕망의 대법원, 낯뜨거운 상고법원'(SBS 취재파일 권○○ 기자) ⇨ 상고 법원 총력추진과 관련하여 누적된 불만 내지 우려가 위 기사를 계기로 대거 표출. 상고법원을 위해 법원이 포기 또는 양보하는 것이 많다는 인식. 입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 등에 로비함으로써 법원의 위상이 낮아지고 비판을 자초했다는 인식. 상고법원에 우호적인 법관들에게는 상고법원 통과가 어렵다는 불안감.
- ▶ 8. 7. 故 이○○ 판사 사망 ⇨ 과중한 업무현실, 통계 압박 등에 대한 불만 폭발. 행정처가 일선 법관의 업무환경 개선보다 상고법원에만 올인한다는 비판적 인식
- ▶ 8. 8.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내부 논의 관련 중앙일보 박○○ 논설위원 칼럼 ⇨ 대법원장 인사권, 법관 관료화 등 관련 논의 촉발 ⇨ 인사총괄실의 공지글
- ▶ 8. 9. 사법부 신뢰도 콜롬비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 ⇨ 사법정책실의 공지글
- ▶ 8. 11. 차○○ 판사 민사재판커뮤니티에 법관 증원 주장하면서 과로, 통계 등 언급 ⇨ 코트넷 게시판에서 실명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 공간에서는 업무량 과다, 법관 증원 미흡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짐 ⇨ 통계 압박 방지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논의 활발하고, '집단적 사건적체 결의' 등의 제안도 있음
- ▶ 8. 15. 어느 여성판사 죽음에 관한 보고서(경향 이○○) + 같은 날 서○○ 연 임탈락 판결과 맞물려 평정, 업무량 등에 대한 비판
- ▶ 8. 19. 대한변협의 상고법원 반대 브로셔 ⇨ 잘만들었다. 법원은 반박못하나
- ▶ 8. 20. 한명숙 전원합의체 선고 ⇨ 정치적 거래 등 비판 기사에 자괴감
- ▶ 8. 21. 전 대법관 아들 초임지 특혜 의혹 기사 ⇨ 사법신뢰 저하의 대표 사례다



3. 대응 방안 검토

▣ 기본방향

- ①오해 불식과 충분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함
 - 대부분의 불만이 막연한 추측과 불안감, 정보 부족과 오해에서 비롯됨
 - 법관으로서의 동질감이나 상호신뢰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직급간·세대간·일선및행정처간 인식의 괴리** 발생 ⇨ 적극적 해소 노력 필요
- ②일선 법관이 정책 준비 및 결정 과정에 대거 직접 참여하는 등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모습 제시할 필요
 - 누적된 불만과 불신의 정도가 심각함 ⇨ 사법정책에 대한 **이성적 비판이 아니라 감정적 반감, 근거없는 불신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정도**임
 - 일선 법관의 입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③인사·복지 정책 등 일선 법관 주요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
 - 일선에서는 ‘행정처가 상고법원에 올인하느라 **법관 업무과중 해소 방안** 및 복지 정책 전반에 관하여 아예 손을 놓고 있다’ 는 인식이 상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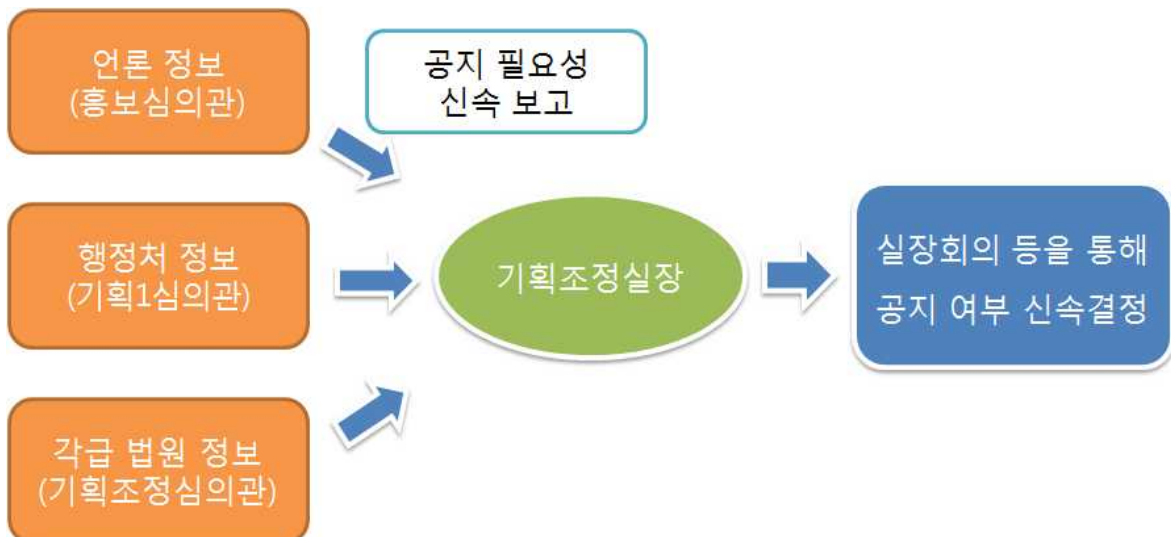
▣ 방안① 순회 간담회 추가 실시 및 정례화

- [필요성] 비공식 간담회에 대한 일선 반응 긍정적임 ⇨ 행정처의 소통 노력 자체를 높이 사고 있음 + 서면공지가 해결할 수 없는 제도의 이면에 관한 설명 및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 [시행방안] 성남·부천 등 참석자가 없었던 대규모 지원에 대한 간담회 실시 및 既 실시 법원의 추가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필요
- [정례화 및 기대효과]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 ⇨ 단발성 간담회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개선 및 정보공유 노력을 천명함으로써 일선 법관들에게 소통에 관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긴밀한 스킨쉽 도모
 - 매 6개월 또는 1년 마다 실시하는 방안

▣ 방안② 코트넷 및 법원장 이메일 등을 활용한 안내 및 정보공유 활성화



- **[필요성]** 최근 대법관 제청절차 및 사법신뢰도 조사에 관한 각 안내문이 법관들 사이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음 ⇨ 일선 법관들이 위와 같은 기초적인 형태의 정보제공조차 반갑게 여긴다는 징표임
 -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공지글을 올리는 것이 사법행정 역량의 상당한 소모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 ⇨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 사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
- **[시행방안]** 예정되어 있는 복지 및 인사정책 관련 공지글 외에 향후 법관의 자긍심에 손상을 주거나 법원을 부당하게 비판하는 언론 보도 등 현안 발생시 담당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신속 반박할 필요 있음
 - 최근 전 대법관 子弟의 초임지 관련 의혹 등과 같이 민감한 사안의 경우는 코트넷 공지글이 아닌 이메일을 활용한 의혹 해소 가능성 검토 필요
- **[신속공지를 위한 업무체계 구축 필요성]**
 - 주무 실국에서 스스로 공지하겠다고 나서지 않거나 공지 의사결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있음 ⇨ 공지 지연되는 사이 이미 오해와 불신이 증폭된 이후에는 공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①언론 정보를 담당하는 홍보심의관, ②행정처 정보를 총괄하는 기획1심의관, ③각급 법원 정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에게 신속한 설명 및 공지의 필요성 보고 ⇨ 실장회의 등을 통해 공지 여부 신속 결정하여 신속한 공지 시행



- [기대효과] ①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오해 불식 + ②신속한 대응으로 불필요한 불신 내지 추측성 불만 축적 방지
- 방안③ 인사제도 관련 오해해소를 위한 Q&A 자료집 준비 필요
- [필요성] ①로스쿨 출신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절차 및 선발기준 등 최근 변화되었거나 향후 변화될 예정인 인사제도 +②법관 증원 노력 등에 대하여 일선 법관의 관심 지대함 ⇨ 선제적으로 설명할 필요성
 - [시행방안] 상고법원 관련 Q&A 자료집 참조(단 인사제도 특성 감안)
 - [기대효과] 10월 말 법안심사 재개 전까지 상고법원에 대한 관심이 다소 소강상태 ⇨ 인사 및 복지 제도에 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상고법원 등 사법정책 현안에 대한 근본적 신뢰도 제고 가능
- 방안④ 법원문화연구반원 공개 모집 및 법원문화개선 TF로 확대개편
- [필요성] 현재 운영 중인 3기 법원문화연구반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미참여 법관 사이에서 인식 부족함 ⇨ ①희망하는 법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반원을 공개 모집하고, ②연구반을 격상시켜 법원문화개선 TF 형태로 운영할 필요
 - [시행방안] 현재와 같이 기획법관 등으로부터 추천받는 방식이 아니라 코트넷에 그간의 경과, 논의 주제, TF의 의의 및 지향점 등을 상세히 공지하고, 희망하는 일선 법관과 심의관이 함께 TF 구성
 - [기대효과] ①사법행정, 특히 젊은 세대 법관들의 관심과 불만이 집중된 법원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에 일선 법관 대거 참여하여 절차적 만족감 고양 + ②수요자 입장에서 검토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 방안 도출 가능성 제고
- 2012~2013년 법원 공무원 사망 사고 다수 발생 직후 근무환경개선위원회 개최로 직원의 불만 여론 진정되었던 사례 참조
- 방안⑤ 일선 법관들 최우선 관심사항인 인사제도에 관하여도 법원 문화연구반 유사한 의견 수렴 절차 도입 여부 ⇨ 인사실 검토 중

양성평등 상담위원 제도 시행 안내 관련 특이사항 **대외비**

2016. 9. 5.

사법정책실

1. 검토 배경

가. 양성평등 상담위원 제도의 시행 관련 안내 : 젠더법 커뮤니티 게시판

1) 양성평등 상담위원 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글 게시 경위

- 2016. 8. 24.자 코트넷 주요공지사항 : 법원행정처 차장님 명의로 [양성평등 상담위원 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
- 2016. 9. 3.자 젠더법연구회 커뮤니티의 '공지사항'에 게시
 - 게시 경위 : 젠더법연구회 회장님(서울고등법원 민○○ 부장판사)의 제안에 따라 간사(서울고등법원 이○○ 고법판사)에게 기초 자료 제공
 - 게시 일자 : 2016. 9. 3.
 - 게시 내용 ☞ 첨부파일은 보고서 말미에 별도 첨부

안녕하십니까?

젠더법연구회 간사 이○○ 판사입니다.

젠더법연구회는 2015. 11. 코트넷 '소통의 창'을 통하여, 성차별적 언행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와 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상담절차 제공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2016년 법관연수 기본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법원문화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올해 3월 젠더법연구회 추천 법관 6분 등 총 14분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언행의 사전 예방책부터 사후 처리 절차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8. 24. 코트넷에 공지된 바와 같이 『양성평등 상담위원 제도』가 마련되었는바, 위 제도의 주무이신 임○○ 총괄심의관의 건의로 양성평등 상담위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시금 안내합니다. 젠더법연구회 민○○ 회장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상담위원을 모시기 위하여 애써 주셨사오니,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언행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상담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홍○○ 부총무님이 알린 바와 같이 2016. 11. 18. ‘양성평등의 현재와 미래(가제)’라는 주제로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젠더법연구회 정기 심포지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젠더법연구회 간사 이○○ 올림

<양성평등 상담위원 제도의 주요 내용>

- ① 목적 :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성차별적 언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가 속히 심리적·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② 양성평등 상담위원의 구성 : 임상심리전문가 4명, 정신과전문의 5명을 ‘양성평등 상담위원’으로 위촉(별도 첨부하는 명단 참조)
- ③ 상담 지원 대상 : 각종 성차별적 언행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법관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여성법관에 한하여 시범실시)
- ④ 상담 절차 개요(첨부한 매뉴얼 참조)
 - 상담을 원하는 여성법관은 별첨 매뉴얼 중 ‘양성평등 심리상담 신청서’에 상담내용 등을 기재하여 이메일로 직접 양성평등 상담위원(첨부한 양성평등 상담위원 명단 참조)에게 신청 ☞ 상담 신청시 공무원증 앞뒷면을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송부함
 - 양성평등 상담위원의 신청서 접수 및 예약
 - 여성법관과 양성평등 상담위원의 1:1 상담 실시 ☞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대 8회까지 가능함

○ 상담위원은 다음달 10일까지 별첨 매뉴얼 중 월별 심리상담 보고서에 주요 취지 기재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에 제출 ☞ 상담신청인의 구체적 인적 정보나 기타 상담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비밀 및 보안 유지

- 양성평등 상담위원은 상담신청인의 공무원증 앞뒷면에 의해 여성법관 여부를 확인하는 외에 상담신청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수집할 수 없음

- 상담신청인이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사실 등 상담과 관련된 내용이 상담신청인의 건강보험진료내역, 보험급여내역 등에 일체 기록되지 않도록 보장함

나. 게시 이후 댓글 내역

1) 차○○ 판사(전부지법 군산지원)의 2016. 9. 4.자 댓글 내용(총 5회)

【1】

논의가 추가로 이어지겠지만, 법원에서 사법행정조직을 통하여 "상담위원", "상담시작일자", "상담횟수", "증상", "진행내용", "호전경과", "기타"등의 내용을 매월 보고서의 형태로 수집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더구나 상담을 받은 법원 여성법관이 그러한 정보제공 자체, 그리고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을 사전에 스크린하여 그에 동의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없이 그런 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의료정보나 개인정보에 관한 현행법조차 위반할 소지가 큼니다. 상담신청인의 구체적 인적 정보나 기타 상담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폐쇄적인 구조상 특정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이 비용지급 혹은 성과확인을 위한 확인자료 차원이라면, 위와 같이 상세한 기재를 요구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사법행정담당자가, 성차별적 언행에 관한 사례에 관한 익명화된 정보를 수집하는 기회를 제공받아 상담이 이뤄진 사례에서의 문제상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취지라면, 그런 식으로 성차별적 언행에 관한 피해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정당한지, 바람직한지가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근본적으로는, 양성평등 상담위원 제도라는 틀 자체의 정당성과 의미에 관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의 한국 법원의 많은 정책들이 그러해왔지만, 연구반과 사법행정담당자들의 논의로 사실상 정책결정이 마무리되고, 그걸 사후적으로 공지하면서 확인 차원의 세미나를 하는 방식은 별로 바람직한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정책결정의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늦더라도, 가능한 많은 사법부 구성원들을 끌어들어서 논의 단계에서부터 논쟁에 끌어들여, 스스로도 정책결정에 약간이라도 발을 담그도록 하는 것이, 제도 자체의 타당성 확보와 또 수립된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

는 측면에서 좋은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젠더법연구회에서 법원 행정처와 진행하는 사법행정예 관한 논의를 자체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젠더법연구회에서 양성평등의 핵심을 건드리는 요소들(근무평정, 근무시간, 업무량, 육아, 가정생활과 일의 양립)과, 성차별적 언행을 유발하고 혹은 유지, 은폐시키는 근본적 재생산 구조를 건드리는 법관 사이의 위계, 권력관계와 잘못된 술과 남성중심적 회식문화(폭탄주 돌리기를 포함하여)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해 나가면 좋을 듯 합니다.

【3】

법원이 최근 추진해온 탄력적 근무, 유연 근무, 파트타임 근무, 스마트 근무 등이 정책결정되어 집행되고, 또 내부 코트넷 사이트와 법원사람들, 외부 언론에 홍보되는 방식을 보면서 약간의 우려가 듭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점(판사 1인의 과도한 업무량, 속도와 효율성에 치우친 재판운영, 부장과 배석의 위계관계에서 오는 배석판사가 근로량이나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없는 사정, 통계상 100% 처리율이 과도한 업무량과 맞물려 가져오는 한계상황)에 관한 해결책은 도외시하고(혹은 공론화하지 않고), 몇가지 눈에 띄는 전체 판사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미치는 영향은 5%도 안되는 정책으로, 95%의 문제상황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착시효과를 가져오는 사법행정담당자의 정책에 젠더법연구회가 힘을 보태거나 함께 하는 방식에 대하여 좀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것이라도 함께 해 만들어 두면 좋겠지라는 생각에 재판업무에 지친 몸을 이끌고 함께 하는 선택을 하지 않기가 쉽지 않지만, 그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문제의 심각성과 진짜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을 가리는 악영향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 보면서, 좀 쉬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4】

그리고, 피해자에 집중하는 방식 외에, 가해자에 대하여 집중하는 방식도 함께 고민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성차별적 언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성원에 대한 상담 외에, 그런 성차별적 언행을 가한 구성원에 대한 상담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합니다. 회식자리, 재판부, 혹은 가해의 공간을 바꿔가며 그런 '피해'를 계속 유발하여, '피해자'를 계속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에 대하여, 어떤 상담 혹은 치료가 필요한지, 혹은 가능한지는 살펴봐야 겠지만, 상담의 영역에서도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부각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피해자 상담은 피해자 상담이고, 가해자 상담은 또 별개 문제라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집행되어 나가는, 홍보되어 나가는 정책이 피해자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다면,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부각되는 인상을 사법부에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상담을 권고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공지가 주는 무게감(이미 존재하는 가해자들에게 주는 경고?)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상담을 만든다는 공지가 주는 무게감(피해자에게 주는 위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5】

마지막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이슈에서, 배석판사 초기 몇년간, 단독판사 초기 몇 년간 집중적으로 (아내의)출산과 (부부의)육아를 경험하는 "남성법관"을, 현재처럼 판결을 거의 안 미루고 마감 내에 써내는 것(판사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여 육아에 소홀해질 수 밖에는 환경에 밀어넣지 않고, 출생후 유치원 입학 혹은 학교 입학 전까지의 기간 동안 육아의 절반(육아휴직으로 때로는 '전부'를)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게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좋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져가는 몸을 회복하면서 자기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약간 '강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 5세 미만의 자녀가 출생한 법관의 경우(남성 법관을 포함하여), 배당을 60-80%로 줄이거나("줄여 주거나"가 아니라, 싫다고 해도 줄이는), 일정 비율의 육아휴직이나 파트타임 근무를 권고하는 시스템** 등을 고민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매우 낮아 우려스러울 정도인 한국 법원 남자판사님들의 젠더법 연구회 가입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정책제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법원 전체의 판사 1인에게 던져주는 살인적인 이 업무량을 법관의 대폭 증원(2~3배) 등으로 단기간에 해결하지 않는 한, 이는 상당한 사건적체와 처리속도, 처리율의 감소를 수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젠더법연구회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관의 대폭 증원(2~3배)의 이슈에 목소리를 내기를 희망합니다.** 자녀 출산과 5세 미만의 육아를 일단 타겟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 8시간 내의 근로, 그 기간 동안 육아휴직 혹은 파트타임 근무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판사 증원의 정도를 논의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녀 출산과 5세 미만의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판사들 숫자를 산출해 낸 다음, 현재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업무경감이 필요한지를 계산하여, 그로 인한 법관증원 수요를 계산하여보고, 이에 관한 논의를 세미나, 총회, 판사회의 등을 통하여 공론화하여, 구체적 정책으로 설정하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은 전혀 줄여주지 않으면서, 스마트 근무와 파트타임 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보라는, 폭력적인 주문을 은연 중에 혹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법행정담당자가 최근 추진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에 대하여, 그 정책방향에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370명의 증원 중 매년 1년치 증원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법관 총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육아휴직, 해외연수 동반 휴직 등이 이야기되는 듯 합니다. 370명에 반영되었던 상고법원에 대비한 법관 증원 수요가 사라진 점까지 고려하면,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합니다.

2) 위 댓글에 대한 응답형 댓글 내역

■ 젠더법연구회 회장님(민○○ 부장님)의 댓글 : 2016. 9. 5.자

차○○ 판사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양성평등 상담위원 제도에 관하여 전법 여러분들과 공감의 덜 이루어졌는가 싶어 송구스럽습니다.

- 이 제도는 그동안 **젠법**에서 사례수집과 문제제기를 하면서 제안한 내용을 법원행정처에서 수용하여 탄생하였습니다(행정처 주도의 타 제도와 차별화됨)

- 별첨된 상담위원은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상담위원 등 검증된 전문가 중에서 여러 단계의 추천과 확인절차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관련업무를 하셨던 여성법관들** 주도로 추천이 이루어졌고 **저도 일부 거들었습니다 (상담위원 선정의 자발성)**

- 차판사님이 제기하신 다른 좋은 대안들을 배척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논의를 가능케 한 피해자 본인에 대한 치유를 우리의 첫번째 과제로 삼고 말씀하신 제도개선에도 계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차판사님! 가을 심포지엄에 꼭 참석하시어 좋은 논의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민○○ 올림

■ **젠더법연구회 간사(이○○ 고법판사)의 댓글 : 2016. 9. 5.자**

차○○ 판사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 수직적, 남성중심적 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익히 공감하는 바이고 앞으로 가이드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에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젠더법연구회 심포지엄**은 연구반과 행정처의 정책을 공지, 확인하는 차원의 요식행사가 아니며, **젠더법연구회**가 추구하는 독자적이고 이상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는 점은 명백히 하겠습니다. 이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일거에 완벽한 세트로 마련될 수는 없는 것일진데, **피해자를 위한 양성평등 상담위원 제도**는 의미있는 첫걸음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후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차 판사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가해자 상담 내지 교육까지)을 그려보고 제도로서 제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리하고 건설적인 의견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뮤니티 게시글을 여러번¹⁾ 이메일 알림으로 받으시게 하여 회원님들께 송구합니다.

법원 안팎의 우울한 소식 중에도 양성평등의 법원문화가 꽃피기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1) 공지사항의 이메일 전송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메일이 발송된 것을 의미

■ 젠더법연구회 전임 간사 신○○ 고법판사의 댓글 : 2016. 9. 5.자

회장님,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주변에 적극 홍보?하여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 2016. 9. 7. 차○○ 판사의 추가 댓글 및 자유게시판 게시 글

● 추가 댓글 : ‘공지사항’에 게시

애정어린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상에서 한번 토론해 보면 좋은 주제여서 별도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후 자유게시판에 새로운 글을 게시 ☞ 내용이 길어 원문은 별도 첨부

[자유게시판 게시 글의 요지]

- 위의 댓글 쓴 이유 : 기본적으로 법원의 정책 관련 의사결정, 집행구조의 한계를 지적한 것
 - ‘판사 1인당 사건부담’이라는 핵심점 문제 해결 의사 없이 맹목적으로 안되는 것(상고법원 및 사실심 충실화)을 되게 하라는 의사결정과 집행만 이루어지는가? ⇒ 의사소통 구조가 문제
 - 사법행정담당자들은 자신의 권한 침해 염려하여 변화를 주도하기 어려우므로, 일선 법관 개인, 법원 내외부 법관 단체, 사회단체의 역할 중요
 - 특히 법관의 결사조직의 중요성 ⇒ 판사회의 실질화 등으로 사법행정 참여
 - 국제인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노동법연구회가 위와 같은 역할을 담지해야
 - 양성평등 상담위원 제도 공지글에 댓글 단 배경 :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큰 틀에서 행정처의 의사결정·정책결정 구조를 바꿀 대안을 모색해야
- 일·가정 양립 정책 :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5% 미만의 약간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들로 착시효과·홍보효과 내는 데 주력
 - 파트타임,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이 실질적 의미 없고, 근로시간의 의미 있는 감소 전제되어야
 - 일중독적 성향을 가진 법원행정처 심의관,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젠더법연구회 회원들이 자신의 삶에서 먼저 ‘일중독’을 벗어나는 모범을 보여야
- 양성평등 상담위원 제도
 - 문제가 있어 보이는 보고절차 부분은 제도 시행을 미루고 11월 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공개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듣고 토론 등 절차를 거치기를 희망
- 장애인사법지원가이드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 관련 TFT 참여 경험

- 행정처 내 의사결정 라인에서만 논의 대상이 되는 폐쇄성 ⇒ 일선 법원 판사, 관련 단체들, 법원 외부의 언론, 사회 단체 등에 토론이 공유되지 않음
- TFT 참여자에 대하여는 일정 비율로 배당 줄여야 함
- 한국 전자소송의 문제점
 - 장애인의 웹접근성 보장 않고, 급속한 전자소송 확대에만 열을 내는 바람에 시각장애인 법관이 들어와서 6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자소송 웹접근성조치 제대로 구현되지 않음

2. 향후 처리 방안

■ [1안] 무대응(온라인) + 비공식적 대응(오프라인)

- 이미 젠더법연구회장, 간사 및 전임 간사의 댓글을 통하여 ‘공지사항’ 내 온라인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됨
-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이 ‘공지사항’이나 ‘자유게시판’에 설명 취지의 댓글을 쓸 경우 차○○ 판사의 추가적 반박·논쟁에 오히려 연료를 공급하게 될 우려
- 다만, 비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제도 시행과 관련한 불안 사항을 제거 ☞ 신뢰관계 있는 젠더법연구회원들을 통한 오프라인 형식

- 상담위원이 월별 심리상담 보고서에 상담횟수, 신청인의 증상, 상담 진행 내용 및 호전 경과 등의 주요 취지를 기재하는 목적 : 계속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대 8회까지 허용하되, 추가 필요 시 법원행정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 상담신청인의 인적 정보나 특정할 수 있는 내용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사법부에서 시행 중인 EAP 프로그램(‘라이프코칭’ 프로그램 및 ‘마음건강 심리상담’)과 동일한 방식으로, 현재 EAP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인적 정보가 특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된 바 없음
- 제도 마련의 적절성 여부(8회까지 양성평등 상담을 실시했는데도 호전이 없고, 추가로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라면 현행 제도상 최대 8회로 한정하고 추가 시 법원행정처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를 판단하여 향후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

■ [2안] ‘공지사항’에 온라인 댓글 형식으로 대응

- 위의 박스 안 내용을 댓글 형식으로 공지하는 방안 ⇒ 상담 내역이 밝혀질 것에

대한 우려를 즉석에서 해소

- 다만, 현재 소강상태인 추가적 논쟁에 새로운 화력을 제공하는 격이 될 수 있음
☞ 차○○ 판사는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하여 기회 닿을 때마다 법관 증원 및 사법행정에 대한 비판(업무량은 줄여주지 않으면서 스마트/파트타임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라는 폭력적 주문을 한다는 취지)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
- 다만, [2안]을 채택하더라도, ‘공지사항’이 아닌 ‘자유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끝.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현황 및 전망

2016. 4. 18.

1. 단독판사회의 현황

가. 단독판사회의 운영진 구성

- 의장: 박○○ 판사(31기, 개인회생단독)
- 간사 4인: 김○○ 판사(32기, 중액단독), 이○○ 판사(33기, 형사단독), 윤○○ 판사(34기, 신청단독), 문○○ 판사(37기, 소액단독)

나. 2016년도 단독판사회의 사업계획 설정(2016. 4. 7.자 메일 공지)

- 4. 1.과 4. 6. 두 차례에 걸친 운영진 모임에서 사업계획 논의
- 목표
 - “좋은 재판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나 관행”을 추출하여 9월에 있을 단독판사회의 정기회의에 부의
- 추진일정
 - 4월 중 연구반 구성 ⇨ 대강의 방향과 안건초안 수립
 - 5월~6월 밥조별로 점심간담회 진행 ⇨ 판사들의 의견 수렴
 - 7월~8월 단독판사회의 안건 정리
 - 9월 단독판사회의 심의

다. 사업계획 추진현황

- 연구반 구성(박○○ 판사의 진술에 의함)
 - 운영진(의장 1, 간사 4) 모두 연구반원으로 참여 + 추가로 최○○ 판사(33기, 신청단



독), 김○○ 판사(36기, 개인회생단독) 참여 ⇨ 총 7명

● 연구반 구성 경위

- 당초 계획 ⇨ 6인 내지 8인 정도의 소규모로 구성하되, 의장과 간사 2인(이○○ 판사, 윤○○ 판사)만이 연구반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연구반원은 운영진 외의 단독판사 중 자원자로만 구성하겠다고 하였음
- 변경 계획 ⇨ 자원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자 최○○ 판사(신청단독으로서 윤○○ 판사가 설득한 것으로 보임), 김○○ 판사(파산단독으로서 박○○ 판사가 설득한 것으로 보임)만 섭외하고 간사진 모두 참가하는 것으로 선회

● 연구반 운영 목표

- ① ‘처리건수와 효율성에 치우친 재판의 문제’, ‘비재판업무 부담의 문제’ 등 좋은 재판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나 관행이 무엇인지를 검토 ⇨ ② 판사들부터 수렴된 의견 종합 ⇨ ③ 판사회에 부의할 안건 성안

■ 단독판사회비 징수

- 경조사비, 점심간담회 비용 충당을 위해 매월 5,000원씩을 원천징수하는 절차 추진 중
- 참고로 배석판사회비는 매월 1만 원씩 원천징수 중

■ 점심간담회는 5월부터 시작될 예정

2. 단독판사회의의 전망

가. 연구반 활동

■ 논의주제

- 4월 18~29일 사이에 연구반 회의를 통해 논의주제를 확정 예정(박○○ 판사 진술)
- “좋은 재판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나 관행”이라는 대주제 하에,
 - 세부주제로 ‘처리건수와 효율성에 치우친 재판의 문제’, ‘비재판업무 부담의 문제’ 거론
 - 아직까지는 ‘사무분담 내규 개정’이 거론된 바 없음



- 박○○ 판사 진술에 따르면, 박○○ 판사는 ‘처리건수와 효율성에 치우친 재판의 문제’, ‘비재판업무 부담의 문제’ 만을 세부주제로 제안하였다고 함
 - ‘사무분담 내규 개정’ 은 박○○ 판사의 관심사항이 아닌 듯함(2015년 ‘법관소통마당’ 에서도 박○○ 판사는 사무분담의 문제를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쪽이었음)
 - 연구반원 중 한 명인 김○○ 판사도 같은 입장으로 보임
 - 다만, ‘좋은 재판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나 관행이 무엇인지’ 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연구반원, 또는 ‘인사모’ 구성원들(이○○ 판사 등이 ‘사무분담 내규 개정’ 을 논의주제로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연구반 논의주제에 대한 논의결과는 4월 중 공지될 것으로 예상

나. 하반기 단독판사회의의 예상

- ① 연구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안건 작성 ⇨ ② 건의문 형태의 안건 상정하여 의결 추진 예상

다. 사법행정위원회와의 관계

- 주요 논의사항이 사법행정위원회 안건과 중복될 가능성 높음
- 단독판사회의가 사법행정위원회의 안건 발굴, 의견 수렴, 논거 제공 등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사법행정위원회와 차별성을 표방하기 위해, 같은 안건이라도 보다 급진적,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거나, 사법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은 민감한 안건을 다루려고 할 가능성 있음
- 사법행정위원회 안건에 단독판사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포함시켜 전국 법원 차원의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낸다면, 단독판사회의가 독자적인 존재감을 갖지 못할 수 있음
- 반대로 사법행정위원회의 논의결과에 단독판사회의의 운영진들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단독판사회의를 통해 건의문 형태로 사법행정위원회의 논의결과(또는 논의 과정 및 절차)를 비판할 가능성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경과 보고

2016. 9. 22.

1. 단독판사회의 구성 및 운영 경과

가. 단독판사회의 집행진 구성

- 의장: 박○○ 판사(31기, 개인회생단독)
 - 사법행정라인 비판 + ‘좋은 재판, 행복한 판사’라는 슬로건(별첨1 출마의 변) : 감성에 호소 ⇨ 2016. 3. 21. 개최된 단독판사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선출
- 간사: 김○○ 판사(32기, 중액단독), 이○○ 판사(33기, 형사단독), 윤○○ 판사(34기, 신청단독), 문○○ 판사(37기, 소액단독)

나. 사법행정라인의 대응: 합리적인 방향 설정 유도

- 선거 과정에서의 포퓰리즘에 대한 지적·항의
 - 2015년 사법행정라인은 ‘법관소통마당’을 운영하고 그 논의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등 어느 때보다 진정한 내부 소통노력이 있었다는 평가(이는 박○○ 판사도 인정)
 - 서울중앙지법 주요 사법행정라인(법원장, 선임수석부장판사, 기획법관)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유지
 - 서울중앙지법 2016년 상반기 단독판사회의에서 한 사법행정라인에 대한 비판은 2015년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라인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표를 얻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을 단독판사회의 집행진에게 항의
 - 특히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였고 ‘법관소통마당’의 일원이기도 했던 박○○ 판사가 사법행정라인을 비판한 것에 대하여 배신감을 간접적으로 표출
 - 단독판사회의 집행진은 ‘박○○ 판사의 출마의 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변명



▣ 단독판사회의와의 소통 노력

- 단독판사회의 집행진과 공식적·비공식적 접촉면을 확장 ⇨ 친밀도 상승
- 점심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많은 건의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용[별첨2 단독판사회의 간담회 고충사항과 조치현황 요약(박○○ 판사 작성, 공지)]
- 2015년에 이어 2016년 사법행정라인에 대한 호감도 유지

- ▣ 위와 같은 과정에서, **단독판사회의의 급진적 공격성향이 급격히 완화** ⇨ 사법행정라인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방향 설정하도록 유도**

다. 연구반 구성·운영

▣ 연구반 구성

- 2016. 4. 집행진(의장 1, 간사 4) + 최○○ 판사(33기, 신청단독), 김○○ 판사(36기, 개인회생단독) ⇨ “좋은재판 연구반”

▣ 연구반 운영

- 5월부터 7월까지 총 4차례 회의 개최 ⇨ 단독판사회의에 부의할 안건 마련 및 정리
- 회의내용 정리하여 “판사들의 수다”라는 제목으로 코트넷 게시(별첨3~6)

라. 점심 간담회

▣ 5월부터 8월까지 단독판사 운영진이 단독판사들과 점심 간담회 실시

- 연구반 논의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 건의사항, 고충 수렴하여 기획법관에게 전달(별첨2)

마. 설문조사

▣ 8월 22~25일 설문조사 실시

- 단독판사 129명 중 114명 참여(별첨7 설문결과)

바. 하반기 단독판사회의의 안건 마련



▣ 연구반 논의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안건 마련

● 안건 1 : 시범재판부 도입 건의안 (법원행정처장께 건의)

현재보다 충실한 재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방안으로 시범재판부를 도입하여 시행할 것(그로 인해 증가되는 타 재판부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증원배치 포함)을 법원행정처장께 건의

- ‘시범재판부’의 내용(별첨8 시범재판부, 적시배당시스템 개요)
- 적정한 수의 사건만을 가지고 진행하는 재판부를 지정하여 집중구술심리와 공판 중심주의에 기초한 충실한 심리와 재판을 시범적으로 운용
- 사건배당 방식 : 우선적으로 ‘적시배당(한 건 처리하면 한 건 배당하는 방식)’ .
차선으로 ‘배당감축’

● 안건 2 : 시범재판부 도입 건의안 (서울중앙지방법원장께 건의)

현재보다 충실한 재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방안으로 시범재판부를 도입하여 시행할 것(그로 인해 증가되는 타 재판부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증원배치 포함)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께 건의

● 안건 3 : 통계·평가 패러다임 전환 건의안

처리의 양과 속도를 강조하는 현재의 통계·평가 패러다임을 지양하고, 충실한 재판을 장려하고 부각시킬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

● 안건 4 : 재판 외 업무 최소화 건의안

재판 외 업무가 재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법관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건의

● 안건 5 : 기획법관 업무 축소 및 재판업무 우선 건의안

기획법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판사가 꼭 담당하여야 할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하고 그 여력은 온전히 재판업무에 투입되게 함으로써, 법관 본연의 재판업무를 우선하는 기조로 운용할 것을 건의

▣ 안건 마련 배경

●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논의는 배제 ⇨ 사법행정라인과의 극단적인 대립은 회피

● 설문조사 결과의 반영

- 위 5가지 안건은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다수의견에 따름



- 시범재판부 도입 필요성: 찬성 의견이 68%
- ‘적시배당시스템’ 으로 변경: 찬성의견이 과반에 약간 못 미침
- 기획법관제도 폐지: 찬성의견이 과반에 약간 못 미침
- 단독판사회의에서 가결될 수밖에 없는 교집합으로 안건 구성

2. 하반기 단독판사회의 결과

■ 9. 19.(월) 17:00 하반기 단독판사회의 개최

- 129명 중 과반수를 간신히 넘긴 69명 참석

■ 안건 토론

- **활발한 토론은 없었고, 5명 의견 제시**

- 시범재판부의 심리방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의견(박○○ 판사) 외에는 지지 의견만 나옴
- 건의안의 구체적인 추진절차에 관하여는 단독판사회의 집행진에게 전권 위임하자는 의견
- 건의안에 찬성하나 실제 실현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의견
- 건의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의견
- 건의안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위 5가지 안건에 대하여 투표 실시 ⇨ 모두 가결

- 안건1 시범재판부 도입 건의안(법원행정처장께 건의) ⇨ 찬성 48, 반대 16, 무효 2
- 안건2 시범재판부 도입 건의안(서울중앙지방법원장께 건의) ⇨ 찬성 48, 반대 16, 무효 2
- 안건3 통계·평가 패러다임 전환 건의안 ⇨ 찬성 60, 반대 4, 무효 2
- 안건4 재판 외 업무 최소화 건의안 ⇨ 찬성 60, 반대 4, 무효 2
- 안건5 기획법관 업무 축소 및 재판업무 우선 건의안 ⇨ 찬성 53, 반대 11, 무효 2



3. 하반기 전체판사회에서의 단독판사회의 결과보고

▣ 하반기 전체판사회[9. 26.(월) 17:00 개최]에서 결과보고

- 단독판사회의 의장(박○○ 판사)의 단독판사회의 결과보고 시간배정 요청 ⇨ 마지막 안건인 기타 보고안건에 '단독판사회의 결과보고' 형태로 별도 시간배정
- 약 15분 간 PPT로 ①설문조사 결과, ②단독판사회의 안건의결 결과보고(종전 내용과 동일하고 새로운 추가사항 없음)

▣ 법원장 마무리 코멘트

- 전체판사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취지로 언급

▣ 기타 논의사항

- 전체판사회의 상정 안건(①사법행정 관련 주요현안 보고, ②법관사무분담 변경내역 보고, ③하반기 주요행사 일정 보고, ④단독판사회의 결과보고) 이외 사무분담기준 논의 등의 추가논의사항은 없었음

4. 향후 전망 : 건의문 전달

- 단독판사회의 집행부는 현재 건의문 초안 작성 중 ⇨ 초안 작성 후 메일을 통한 단독판사들의 의견 수렴 예정
- 건의문 완성 후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법원장에게 건의문 전달하면서 가시적인 조치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
- 법원행정처에도 어떤 방식(코트넷 ①'제도개선법관토론폰방' 게시, ②사법행정위원회 안건 게시 등)에 의하든지 건의문 전달 예상

5. 대응방안

▣ 통계·평가 패러다임 전환 건의안(안건3)

- 가시적인 조치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가시적인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조



차 부족하여 **단독판사회의의 요구사항 불명확함**

- 현재도 1심 집중, 종국률 강조 등 충실한 재판을 위한 패러다임 구축하고 있음 ⇨ **장기적인 검토사항에 해당. 즉각적인 조치 불요**

▣ 재판 외 업무 최소화 건의안(안건4) 및 기획법관 업무 축소 및 재판업무 우선 건의안(안건5)

-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음 ⇨ **가시적인 조치 불요**

▣ 시범재판부 도입 건의안(안건1, 2)

- 단독판사회의 집행진의 **중점추진사항**
- 건의안의 수용, 거부 여부의 판명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다른 건의안과 구별**
- ①형사합의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집중증거조사부’와 유사하다는 점, ②이미 수원지방법원에서 비슷한 시범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③수용거부 시 단독판사회의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 등 고려 ⇨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용 검토**
 - ‘적시배당’에 관하여는 설문조사결과 다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배당감축’ 안으로 시행
 - 시범재판부의 구체적 운영방식에 대한 컨텐츠 부족 ⇨ **시범재판부의 재판장에게 심리모델 구축과 운영 성과를 엄격히 요구**

▣ **시범재판부 운영**은 개별 법원 차원의 문제. 나아가 “배당건수를 줄여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법관 증원 등)이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 요구를 할 가능성(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한 제안 등) ⇨ **행정처 차원의 대비 필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동향보고

1. 논의경과

- 7. 4. 김○○ 판사(단독판사회의 의장)가 단독판사들로 구성된 사무분담 연구모임(이하 ‘TF’) 결성을 메일로 공지, TF 참여 희망자 모집
- 7. 25. 김○○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법관의사무분담에관한지침’ (이하 ‘지침’) 개정안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TF에서 발표
 - TF 구성원은 약 10명이라고 하며 당일 일정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지는 않았고, 추후(8월 중·하순 경) 재차 논의 예정이라고 함

2. 지침개정안 설명자료 내용 요지

- **현행 사무분담 규정의 문제점 비판**
 - 투명성,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법원장 자의를 배제하기 어려움
 - 실제로는 법원장 개인의 자의보다 행정처, 대법원, 정부, 언론 등의 법원장을 통한 간접 가능성이 더 문제
 - 재판의 공정성, 재판에 대한 신뢰도 저하
 - 법원장이 특정 사건의 재판장을 선택하거나 특정 성향의 재판장 선택
 - 특정 사무분담의 선발 개념화로 사법관료화 조장
 - 특정 사무분담을 판사 개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선발(법원 전체적으로는 행정처 선발, 각급 법원 별로는 형사, 파산 사무분담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임) ⇨ 향후 각종 인사에서도 유리하다는 인식 확산 (예 : 행정처 출신의

특정 사무분담 보임, 중앙 형사합의부장의 고법부장 승진)

▣ 외국(미국, 독일)의 사례 소개

- 미국은 사무분담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독일은 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사무분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사무분담을 정한다고 소개함
 - ⇒ 미국은 법관이 generalist로서 모든 종류의 사건을 구별 없이 담당하므로 당연한 것임. 우리나라와 달리 전보인사도 없음
 - ⇒ 독일은 매년 초 법관들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사무분담을 정하는 것은 사실이나, 개인이 희망하지 않는 이상 전보인사가 없고, 법원장은 고등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산하 위원회에서 임명한다고 함

▣ 지침 개정안

● 사무분담 기준

- 법관 개인의 ‘희망’을 1순위로 반영하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함
- 민사, 형사, 파산 모두 법관의 일반 업무로 특정 법관에게 적성, 전문성이 별도로 있을 수 없음
- 법관 개인의 ‘희망’을 1순위로 할 경우 기준에 희망과 무관하게 형사, 파산사무분담을 민사에 앞서 먼저 선발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음 ⇒ 사법관료화 방지
- 지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단독판사) ① (생략) ② 단독판사는 각 업무분야별로 사법연수원의 특정 기수에 치우치지 않도록 안배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5조(단독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단독판사는 각 업무분야별로 희망을 우선으로 하여 배치하되, 사법연수원의 특정 기수에 치우치지 않도록 안배한다.</u>

● 사무분담 절차

- 사무분담 확정 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규정 신설 → 운영위원들이 법원장과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무분담 확정 후 수석부장들이 대회의장 단상에 올라 여러 가지를 두루 배려했다고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
- 지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0조의2(사무분담에 관한 의견수렴) 법원장은 사무분담을 확정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그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향후 추진 계획

● 법원장에 대한 설명 요청

- 중앙지법 내규인 ‘판사회의의설치및운영에관한내규’에 근거하여 법원장에게 희망 1순위가 받아들여진 비율 등의 공개를 요청할 예정 ◀ 지난 2014. 2. 사무분담 결과를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보임(단, 아래와 같이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판사회의의설치및운영에관한내규

제4조(설명요청) 판사회의는 의결을 거쳐 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당해 판사회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장에게 설명 또는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다른 법원 단독판사회의와 공조협력 ⇒ 다른 법원 사무분담 규정의 내용 확인, 개정안 취지 전파
- 중앙지법 배석판사회의와 협력
- 단독판사회의 및 전체판사회의에서 ppt 준비, 논문 발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 상반기 통계 분석 보고

2016. 8. 2.

1. 개요

- 2016. 3. 1. ~ 2016.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중액+고액+재정) 통계 분석 보고

2. 전년 동기 대비 통계 분석

2015년(2015. 3. 1. ~ 2015. 7. 31.)
2016년(2016. 3. 1. ~ 2016. 7. 31.)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실질 처리건수	실질 조정 화해율	실질 상소율	종국률	실질 종국률	장기미제율		미제분포지수	
									시점	종점	시점	종점
단	2015	32,278	24,832	5,999	36.8%	18.3%	95%	81.7%	1.27%	1.32%	78.1	79.0
독	2016	20,347	21,800	7,765	34.5%	17.1%	93.4%	82.9%	1.80%	2.58%	72.9	63.9

■ 개관

- 접수건수 대폭 감소(▼36.96%)
 - 공시독촉 시행으로 기존 단독사건이 독촉사건으로 전환
- 처리건수 감소(▼12.21%), 종국률 감소(▼1.6%)
 - 공시독촉 시행으로 비분쟁성 사건 감소, 분쟁성 사건 비율 증가에 따른 현상
- 실질처리건수 증가(▲29.44%), 실질상소율 및 실질종국률 다소 개선(1.2% 개선)
 - 그러나 재판장 1인당 실질처리건수는 거의 동일(2015년 113건 ⇨ 2016년 116건)
 - 민사단독 재판장 증원(2015년 53명 ⇨ 2016년 67명)
 - 2015년 상반기에는 고액단독 신설로 실질처리 미흡했던 사정 감안하면 거의 동일



- 실질상소율 감소 및 실질종국률 증가 정도 미미

● 실질조정화해율, 장기미제율, 미제분포지수 악화

▣ 분석

● 「재판부 증설 + 접수건수 감소」로 심리여건 개선. 그러나 재판부당 실질처리건수는 그대로이고, 사건처리의 질은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움

- 비분쟁성 사건의 업무량 감소가 분쟁성 사건의 심리 충실화로 이어지지 않음

● 원인 분석

☑ 업무량 감소에 따른 여력 ⇨ '심리 충실화' 보다는 '여가활동 등'에 투입

- '근무여건이 작년(2015년)보다 좋아졌다'는 것이 중액단독 재판장들의 대체적인 평
- "행복한 판사"를 내세우는 단독판사회의의 캐치프레이즈에 영향

☑ 사법행정적 개입의 어려움

- 단독판사회의의 견제로 사법행정적 개입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
- 반면, 항소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사법행정적 개입 ⇨ 통계 개선으로 이어짐(다음 참고사항 참조)

☑ 민사단독 인적 구성의 내재적 한계

- 형사단독, 파산단독 자원 선발 관행 ⇨ 민사단독 자원 열악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부장 직전 기수(30, 31, 32기)가 민사단독 주력기수. 희망과 달리 행정처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가지 못한 판사들이 다수 포진 ⇨ 스스로 "승포판"(승진포기판사), "출포판"(출세포기판사)이라 칭하며 냉소적 태도
- 이는 인력 투입, 사법행정적 개입 등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한계로 작용

☑ 관할 확대, 새로운 제도의 시행 등에 따른 재판부의 잦은 변동

- 2015. 2. 23.자 고액단독 신설, 2015. 7. 1.자 합의부 폐지 및 단독 증설, 2016. 2. 22.자 생활형분쟁사건처리부 신설 등으로 재판부의 잦은 변동 ⇨ 잦은 재배당은 사건처리에 영향
- 과도기 ⇨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 필요

☑ 여건 변화에 따른 심리모델의 부재

- 합의부 관할 축소, 소액 관할 확대(예정)로 일반 단독 관할 사건의 소가 상승 + 공시독촉 시행으로 비분쟁성 사건 감소 ⇨ 분쟁성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심리모델 제시 필요



3. 참고사항

▣ 전국 민사단독 통계 비교

2015년(2015. 3. 1. ~ 2015. 7. 31.)
2016년(2016. 3. 1. ~ 2016. 7. 31.)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실질 처리건수	실질 조정 화해율	실질 상소율	종국률	실질 종국률	장기미제율		미제분포지수	
									시점	종점	시점	종점
단독	2015	32,278	24,832	5,999	36.8%	18.3%	95%	81.7%	1.27%	1.32%	78.1	79.0
	2015	89,509	79,645	25,970	43.8%	18.9%	93%	81.1%	0.99%	1.18%	79.8	78.7
	2016	20,347	21,800	7,765	34.5%	17.1%	93.4%	82.9%	1.80%	2.58%	72.9	63.9
	2016	75,469	73,589	29,252	40.9%	17.8%	92.3%	82.2%	1.24%	1.61%	77.9	72.1

- 「민사단독의 접수건수·처리건수·종국률 감소 + 실질처리건수 증가, 실질상소율, 실질종국률 다소 개선 + 실질조정화해율, 장기미제율, 미제분포지수 악화」의 경향성은 전국적인 추세로 보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타 사무분담 통계 비교

2015년(2015. 3. 1. ~ 2015. 7. 31.)
2016년(2016. 3. 1. ~ 2016. 7. 31.)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실질 처리건수	실질 조정 화해율	실질 상소율	종국률	실질 종국률	장기미제율		미제분포지수	
									시점	종점	시점	종점
항소	2015	2,723	3,364	2,814	32.1%	21.1%	82.3%	78.9%	0.49%	0.45%	81.0	81.9
	2016	3,200	3,473	2,971	25.6%	18.3%	84.3%	81.7%	1.89%	1.65%	83.8	85.9
합의	2015	4,430	5,583	3,717	15.4%	41.6%	71.7%	58.4%	3.95%	5.87%	49.9	36.8
	2016	4,905	4,063	2,803	13.7%	39.2%	72.5%	60.8%	7.81%	8.61%	29.2	32.1
소액	2015	139,690	118,199	16,173	23.0%	5.3%	99.1%	94.7%	1.97%	2.04%	94.7	94.9
	2016	121,802	126,163	19,449	17.3%	5.5%	99.0%	94.5%	1.42%	1.60%	95.9	96.1
단독	2015	32,278	24,832	5,999	36.8%	18.3%	95%	81.7%	1.27%	1.32%	78.1	79.0
	2016	20,347	21,800	7,765	34.5%	17.1%	93.4%	82.9%	1.80%	2.58%	72.9	63.9

- 항소부: 재판부 수 변동 없음에도 처리건수 증가. 상소율, 종국률까지 개선되어 고무적
- 합의부: 2015. 7. 1. 재판부 4개 폐지로 처리건수 감소. 상소율, 종국률 개선
- 소액단독: 2016. 2. 22. 재판장 1명 증원으로 처리건수 증가. 상소율, 종국률 유지



단독판사회의 결과 보고

2014. 9. 22.

1. 개요

- 일시 : 2014. 9. 22. 11:00~12:30
- 장소 : 동관 4층 중회의실
- 참석 : 전체 128명 중 73명 참석(의사정족수 : 65명)

2. 진행 경과

가. 제1호 안건 - 단독판사회비 원천징수의 건

- 안건의 내용
 - 단독판사회비를 월 3,000원씩 희망자에 한하여 원천징수 - 의장(김○○ 판사)이 직접 상정 및 제안 설명
 - 그 동안 의장단이 단독판사들과 간담회 운영, 연구모임 운영 등을 함에 있어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 설명
- 논의 결과 및 투표 결과
 -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는 판사는 없었음
 - 투표 실시하였으나, 의장이 투표 결과 등을 추후 공지하기로 함(제2호 안건과 같은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하였고, 제2호 안건이 부결되자 제1호 안건에 대하여는 추후 결과를 공지하겠다고만 하고 회의 마무리)

나. 제2호 안건 - 사무분담지침 개정의 건

- 안건의 내용
-



- 단독판사 13인이 사무분담 연구모임 결성하여 2차례(7. 25. 및 9. 2.) 회의 개최하였다고 함
- 신○○ 판사(32기, 제50민사단독)가 “사무분담은 재판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ppt 자료 발표
 -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무분담을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
 - 특정재판부에는 믿을 만한 사람만 배치하고, 검사들은 판사들이 상부의 뜻에 맞는 재판을 하는 것을 빗대어 “법원동일체 원칙” 이라고 평가한다는 등 언급함
 - 객관적인 사무분담 기준 필요 ⇨ ‘희망’ 을 1순위로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객관적
- 의장이 <별지>와 같이 1, 2안의 내용을 제시하고 그 논거를 설명함

■ 논의 결과

- 연구모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이○○ 판사(31기, 제47민사단독)가 “다들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으니 특별한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자” 는 발언을 하여 상당수 판사들이 반발함
- 특히, 반론이 표명되기에 앞서 간사단이 서둘러 투표용지를 수거하려고 하자 강○○ 판사(28기, 제8형사단독)가 이에 반발하며 퇴장하였고, 기획법관이 절차에 문제 제기 ⇨ 이에, 의장이 그 시점까지 수거된 투표용지를 일단 투표함 밖으로 꺼내 분리함
- 신○○ 판사 발표에 찬성하는 취지로 발언한 판사는 이○○ 판사 뿐이었고, 이○○, 양○○, 박○○ 판사 등이 반대 의견 개진함

■ 투표 결과

- 제7조 개정안 : 1안 및 2안 모두 과반수(73명 중 37명) 넘지 못하여 부결



	제1안 찬성	제2안 찬성
토론 종료 이후 수거된 표	17	17
토론 종료 이전 수거된 표	7	12
전체	24	29

※ 전체 73명 중 위 합계 53명을 제외한 20명은 1, 2안 모두 반대한 것으로
보임

- 제10조 개정안 : 1안 및 2안 모두 과반수(73명 중 37명) 넘지 못하여 부결

	제1안 찬성	제2안 찬성
토론 종료 이후 수거된 표	22	14
토론 종료 이전 수거된 표	10	11
전체	32	25

※ 전체 73명 중 위 합계 57명을 제외한 16명은 1, 2안 모두 반대한 것으로
보임



<별지>

중전 지침과 개정안 대비표

중전		개정	
제7조 (예비 판사)	삭제	제7조 (업무 분야)	<p>1안) 합의부의 재판장, 단독판사, 배석판사는 각 업무분야 별로 희망을 우선으로 하되, 위 기준에 의하여 경쟁하는 경우 중전 사무분담, 전문성, 사법연수원의 기수, 발원경력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p> <p>2안) 합의부의 재판장, 단독판사, 배석판사는 각 업무분야 별로 희망을 우선으로 하되, 그 밖에 중전 사무분담, 전문성, 사법연수원의 기수, 법관경력과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한다.</p>
제10조 (개정 및 사무분 담에 관한 의견 수렴)	법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사회의에 갈음하여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지침을 개정하거나 사무분담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운영 위원회 에서 의견 수렴)	<p>1안) 법원장은 사무분담을 특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를 열어 그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2안) 법원장은 사무분담을 특정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그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판사회의 및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

2016. 4. 8.

기획법관

1. 직급별 판사회의 의장 선임 방법 현황(전국 20개 지방법원 전수조사)

- 운영위원회 위원 : 직급별 판사회의 의장·간사가 당연직 위원(대부분)
- 직급별 판사회의 의장 임명방법(2016년 이전)

선임자 당연직 법원	선출제 채택 법원
12개	8개(수도권 법원 위주)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수원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청주지법 춘천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전주지법	① 서울중앙지법 (정확한 개정일자 확인은 어려우나 99년 이전 선출 규정 도입) ② 서울가정법원 (정확한 개정일자 확인 어려우나 최근 개정은 아님) ③ 서울남부지법 (정확한 개정일자 확인 어려우나 2003년 이전 선출 규정 도입) ④ 서울서부지법 (정확한 개정일자 확인 어려우나 최근 개정은 아님) ⑤ 인천지법 (2015년 개정 - 단독판사 일부가 건의하여 개정) ⑥ 의정부지법 (정확한 개정일자 확인 어려우나 최근 개정은 아님) ⑦ 광주지법 (정확한 개정일자 확인 어려우나 최근 개정은 아님) ⑧ 제주지법 (정확한 개정일자 확인 어려우나 최근 개정은 아님)

- 2016년 상반기 개정 논의가 있는 법원 상황
 - 서울동부지법: 복수의 단독판사가 기획법관에게 개정 필요성 건의
 →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2016. 5. 3. 예정)에서 논의 예정
 - 수원지법: 판사 1인이 수석부장판사, 기획법관에게 개정 필요성 건의
 → 내규 개정안 마련 후 하반기 전체 판사회의에서 논의 예정
 - 춘천지법: 법원장이 먼저 개정 필요성 제기
 →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규 개정 완료(선임자 → 선출)

2. 선임자 당연직 제도와 선출 제도의 비교

1) 선임자 당연직 제도

■ 특징 및 주된 도입근거

- **특징: 대부분 법원이 채택**(전국 20개 법원 중 12개 법원이 명문화 + 선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법원도 관행적으로 '선임자'를 선출)
- **주된 도입근거: 법조경력 중시 문화와 관행의 반영**

■ 장점(+)

- ① **경험 풍부하고 신중한 법관이 의장이 됨**
 - 설득, 화합, 통솔에 절대적으로 유리
- ② **법원 내 각종 위원회 의장 결정 방식과 조화**
 - 대법관회의, 판사회의 → 서열·법조경력에 따라 대법원장, 법원장이 의장
 - 기타 위원회(양형위원회 등)도 법조경력·연령 고려하여 선정 → 선출제 無

■ 단점(-)

- ① **의장이 구성원들 다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
 - 법관들 사이에 경력 차이가 클 경우 더욱 심화
 - 다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 의견 수렴 시 보완 可
- ② **법조일원화 정착 시 법관 경력 짧은 법관이 의장 될 가능성 有**
 - 법원 외부 경력이 많은 법관 → 법원 내부 상황에 대한 이해나 장기 재직 법관들의 요구 등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질 가능성 有

2) 선출 제도

■ 특징 및 주된 도입근거

- **특징: 일부 법원 채택**[전국 20개 법원 중 8개 법원이 채택, 그러나 관행적으로 선임자가 의장으로 선출되어 실질적 선출 거의 없음(예외: 2016년 서울중앙지법)]
- **주된 도입근거:** 사법의 민주화 요구 +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강화 요구 반영

■ 장점(+)

- ①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에 관한 만족감 제고**
 - 비록 자문 역할이나 법관들이 직급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사법행정에 관여할 수 있음 → 사법행정 참여에 대한 절차적 만족감 부여 可
- ② **법관 의사 반영의 적극적·실질화 가능성**
 - 선출직은 당연직에 비하여 구성원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가능성 有
- ③ **참신한 아이디어 제시 →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
 -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가능성 有
 - 젊은 법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 사법행정에 활력 부여 가능

■ 단점(-)

- ① **판사회의 성질 및 업무성격과 相異**
 - 판사회의는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설치(법원조직법 9조의2)
→ 자문을 할 사람을 선거로 뽑는 것은 이례적임
 - '사법'이나 '행정'은 그 업무의 성격이 다수결로 결정할 것이 아님

● ② 법원의 다른 위원회들의 구성방식과 배치

- 법원 내부의 위원회 중 의장 선출 방식 채택 위원회 無
 - 대법관회의, 판사회의 → 서열·법조경력에 따라 대법원장, 법원장이 의장
 - 기타 위원회(양형위원회 등)도 법조경력·연령 고려하여 선정 → 선출제 無
- 선출제 방식 도입 시, 사법행정위원회 등 他 위원회의 위원, 의장 선발 방식에 영향을 미칠 우려 有

● ③ 전체판사회의 의장이 등 구성에 악영향 우려

- 주된 문제로 대두되는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 시, 다른 직급별 판사회의 의장(부장판사회의, 배석판사회의)도 선출하자는 요구로 연결
 - 부장판사회의 의장이 수석부장이 아닌 경우 회의 운영 등 곤란 초래 우려
- 나아가 판사회의 의장을 법원장이 당연히 맡도록 한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의 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음

● ④ 파벌 형성 및 분열 가능성 → 總意 전달·조직 화합에 부정적

- 후보자 중심으로 분열되어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 → 조직 화합 저해
- 대다수 법관 성향상(재판 전념, 사법행정에 소극적), 사법행정 참여 욕구 강한 특정 단체 주도로 조직적 의장 선출 시도 가능성 有(2016년 서울중앙지법 사례) → 전체 법관이 아닌 소속 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우려 (법관 總意 파악에 오히려 부정적)
- 법조일원화 정착 후, 의장 선출 시 출신(검사, 변호사, 로클터 출신 등)에 따른 세력화 위험성 있음(현재의 변협 회장 선거 유사한 혼란 상황 초래 우려)

3. 대전지방법원 내규 개정 필요 여부

▣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제도 관련

- 바람직한 의장 결정 방식 → 관점에 따라 견해가 나눌 수 있음
- 司法 및 판사회의 성격(자문기구), 판사회의 논의사항, 他 위원회 등과의 균형, 법관 내부 화합 등 고려 → **선출제는 바람직하지 않음[결론 1]**
- 하지만, 법관 출신의 다양화(법조일원화 등), 법조경력·서열만으로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시대의 변화 반영 필요성 → **선임자 당연직 제도의 보완은 필요[결론2]**
 - 의장 선정 절차 변경 방안, 현 방식 下 법관 의견수렴 활성화 방안, '선임자 기준' 변경 방안 등 다각도의 고려 하에 최선의 보완 방향 모색 필요 → 현재 최선의 방안 준비 안됨

▣ 대전지방법원 내규 개정 필요 여부

- **[결론 1 + 결론 2]** 선출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선임자 당연직 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나 현재 최선의 보완 방안은 준비되지 않음
- 대전지방법원 내 의장 선출 방식의 변경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선출제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 타 법원(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출제 실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장·단점 실증적 분석 後 개정 필요 여부 검토함이 상당 <끝>

[별첨 1] - 사법부 내 각종 회의체 정리

	대법관회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양형위원회	판사회의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조직법 18조 -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조직법 25조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조직법 8편 - 양형위원회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조직법 제9조의 2 -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원 (구성원) 및 임명·위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관 - '의장'이라는 표기는 법령상 없으나 당연히 대법원장님이 의장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대법원장님이 위촉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1인은 상임위원) -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장도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법원 판사 전체 - 의장은 법원장(당연직)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임기 규정 없음(대법관 임기 동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내의 활동기간을 대법원장님이 정함 - 활동 기간 6개월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 2년 - 연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임기 규정 없음
회의 개최 및 소집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례 대법관회의와 임시 대법관회의로 구분 - 정례 대법관회의는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 - 임시 대법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법원장이 수시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이 소집(그 외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장이 1년에 2회 소집 - 필요시 법원장 소집 가능 - 구성원 5분의 1 이상 또는 내부판사회의 의장의 소집요구시 법원장이 소집
논의 안건 및 안건 부의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규정된 안건 - 대법원장님이 부의한 안건 - 보고서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별하여 진행 - 대법관회의 심의사항은 법원행정처 실·국장이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장님이 부의한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명시적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건 - 법원장이 회부한 사항 - 구성원 5분의 1 이상 또는 내부판사회의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개최 시 판사들이 의제로 요청한 사항
결과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사항으로 정하여진 것은 의결 - 보고서항은 보고받는 것으로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장님께 건의할 사항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설정, 변경 관련 의결 - 양형정책 연구,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의결을 필요치 아니하거나 의결이 적절치 아니하는 경우 논의만 함

[별첨 2]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의장 선임방안

-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제90조) - 헌법상 의장은 직전대통령(없을 시 대통령이 지명)
- 국가안전보장회의(헌법 제91조) - 의장은 대통령(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 제2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제92조) - 의장은 대통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 제1항)
- 국민경제자문회의(헌법 제93조) - 의장은 대통령(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3조)
- 노사정위원회(법률) -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노사정위원회법 제4조 제1항)
- 규제개혁위원회(법률) -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 제2항)



2013년 국정감사

10/14 대법원국감 이후추가분

— 요약본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법원 행정 처



- 목 차 -

◆ 예상질의 1 - 주요 현안 ◆

I. 국민참여재판 관련	1
II.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공소장변경 허가	30
III. 국정원 사건 관련 위법압수수색 논란	34
IV. 재정합의부 운영 관련	37

◆ 예상질의 2 - 각 실·국별 ◆

[사법지원실-민사]	42
I. 4대강 정비사업 관련 재판 경과	42
II. 남경필 의원, 홍준표 도지사 명예훼손 사건	54
II. 밀양 송전탑 관련 사건 현황	56
III. 대구고법 인혁당 사건 관련	60
[사법지원실-형사]	61
I. 명예훼손 유무죄 '복불복 판결' (박○○ 부장 항소2부)	61
II. 발레오노조 금속노조 탈퇴 사건 소송 경과	64
III. 북부지법 친고죄 실수 유죄 실형선고 사건(김○○ 부장)	68
II. 형사재판(1회 공판기일까지의) 소요기간 편차 관련	73
[사법지원실-가사/소년]	66
I. 가사·소년 전문법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76
II. 후견적·복지적 기능의 지역적 편차 해소 방안	77



예상질의 1 - 주요 현안

I. 국민참여재판 관련

가. 통계

▣ 전체 현황

[2008.1.1. - 2013.9.30.]

		접 수	처 리				미 제
			소계	판결	배제	철회	
2008	건수	233	215	64	61	90	18
	비율	100.0%	92.3%	27.5%	26.2%	38.6%	7.7%
2009	건수	336	308	95	75	138	46
	비율	-	91.7%	28.3%	22.3%	41.1%	-
2010	건수	437	413	162	75	176	70
	비율	-	94.5%	37.1%	17.2%	40.3%	-
2011	건수	489	494	253	63	178	65
	비율	-	101.0%	51.7%	12.9%	36.4%	-
2012	건수	752	672	274	124	274	145
	비율	-	89.4%	36.4%	16.5%	36.4%	-
2013.9.30.	건수	561	591	243	88	260	101
	비율	-	105.3%	43.3%	15.7%	46.3%	-
합계	전체합계	2,808	2,693	1,091	486	1,116	101
	전체비율	100.0%	95.9%	38.9%	17.3%	39.7%	3.6%

▣ 참여재판 v. 일반형사합의재판 실행, 집행유예, 무죄율 비교

[2008.1.1. - 2013.9.30.]

판결		참여재판		일반형사합의재판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전체 범죄	실행	798	73.3%	49,161	43.8%
	집행유예	177	16.0%	41,349	36.6%
	무죄	74	6.9%	3,829	3.5%
성범죄	실행	117	65.7%	10,745	49.1%
	집행유예		12.9%	8,294	37.9%
	무죄		15.2%	559	2.6%

▣ 평결/판결 일치율



[2008.1.1. - 2013.9.30.]

총 판결건수	일치건수	일치비율	불일치건수	불일치비율
1091	1009	92.5%	82	7.5%

■ 자백/부인사건 비율

[2008.1.1. - 2013.9.30.]

연도	부인	비율	자백	비율	판결
2008년	46	71.9%	18	28.1%	64
2009년	67	70.5%	28	29.5%	95
2010년	126	77.8%	36	22.2%	162
2011년	168	66.4%	85	33.6%	253
2012년	161	58.8%	113	41.2%	274
2013.9.	145	59.7%	98	40.3%	243
합계	713	65.4%	378	34.6%	1091

■ 배심원(다수) 양형의견/선고형량 분포

- 양형의견=선고형량 : ±1년 이내를 의미함

[2008.1.1. - 2013.9.30.]

구분	양형의견 > 선고형량		양형의견=선고형량		양형의견 < 선고형량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비율)	50	5.9%	738	87.0%	60	7.1%	848	100.0%

■ 재판진행일수

[2008.1.1. - 2013.9.30.]

구분	합계	
	건수	비율
1일 만에 마친 경우	998	91.5%
2일 이상 걸린 경우	93	8.5%
합계	1,091	100%

■ 최근 국회 요구자료



- 총 1,091건 중 평결/판결 일치건수는 1,009건, 불일치건수는 82건
- 불일치 82건 중 평결무죄/판결유죄는 76건, 평결유죄/판결무죄는 6건
- 불일치 82건 중 65건(79.3%)에 대하여 항소제기되었고, 그 중 36건 (55.4%)은 항소기각, 26건(25%)은 파기되었으며, 3건은 진행 중
- 불일치사건 중 항소심에서 파기된 26건 중 3건은 유무죄 변경, 나머지는 양형변경 ⇒ 참여재판 전체 항소사건 중 유무죄변경은 총 19건

■ 항소

- 참여재판 v. 일반형사합의재판 항소율 비교

[2008.1.1. ~ 2013.9.30.]

	항소율			항소심 파기율
	검사(쌍방포함)	피고인(쌍방포함)		
참여재판	44.7%	63.0%	81.5%	25.8%
일반형사합의재판	24.9%	48.5%	58.3%	42.5%

- 참여재판사건의 항소율은 일반형사합의사건보다 23.2%p 높으나, 항소심 파기율은 16.7%p 낮음

- 참여재판 v. 일반형사합의재판 항소심 양형변경률, 양형감소율 비교

[2008.1.1. - 2013.9.30.]

구분	전체 처리건수	국민참여재판 항소심 양형현황				전국고등법원 양형현황	
		양형변경(증감)		양형감경		양형변경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814	194	23.80%	144	17.70%	32.20%	24.00%

- 참여재판사건의 항소심 양형변경률은 일반형사합의사건보다 8.4%p 낮고, 양형감경률도 6.3%p 낮음
- 양형변경사건(194건) 중 양형감경사건(144) 비율은 74.2%임 ⇒ 조선일보의 90%(2012. 12. 31.까지 82건 중 74건)은 기자가 판결문을 분석하여 주관적으로 추출해 낸 수치임

■ 배심원후보자 출석률



항 목	인 원	비 고
소환(A)	112,897명	
송달불능(B)	27,956명	송달불능률 24.8%
제척사유 등 인정되어 출석취소통지(C)	21,132명	
출석의무자(D=A - B - C)	63,809명	
출석자(E)	31,352명	출석률(E/A) : 27.8% / 실질 출석률(E/D) : 49.1%

● 참여재판 무죄 74건 중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사건 수

[2008.1.1. - 2013.9.30.]

법원	무죄 건수	무죄선고 중 배심원 전원무죄 건수
서울중앙지방법원	7	5
서울동부지방법원	3	2
서울남부지방법원	5	2
서울북부지방법원	5	2
서울서부지방법원	8	7
의정부지방법원	1	1
인천지방법원	9	5
수원지방법원	8	6
춘천지방법원	1	1
대전지방법원	4	2
청주지방법원	1	1
대구지방법원	0	0
부산지방법원	10	6
울산지방법원	6	5
창원지방법원	3	3
광주지방법원	0	0
전주지방법원	2	0
제주지방법원	1	0
합계	74	48

● 법원별 참여재판 실행, 집행유예, 무죄, 기타(벌금 등) 현황

[2008.1.1. - 2013.9.30.]

법원	실행		집행유예		무죄		기타		전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73	62.9%	25	21.6%	7	6.0%	11	9.5%	116
서울동부지방법원	45	63.4%	17	23.9%	3	4.2%	6	8.5%	71
서울남부지방법원	43	75.4%	7	12.3%	5	8.8%	2	3.5%	57
서울북부지방법원	54	75.0%	8	11.1%	5	6.9%	5	6.9%	72



법원	실형		집행유예		무죄		기타		전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서부지방법원	21	58.3%	5	13.9%	8	22.2%	2	5.6%	36
의정부지방법원	25	78.1%	6	18.8%	1	3.1%	0	0.0%	32
인천지방법원	45	68.2%	8	12.1%	9	13.6%	4	6.1%	66
수원지방법원	78	71.6%	18	16.5%	8	7.3%	5	4.6%	109
춘천지방법원	18	85.7%	2	9.5%	1	4.8%	0	0.0%	21
대전지방법원	80	79.2%	15	14.9%	4	4.0%	2	2.0%	101
청주지방법원	36	75.0%	9	18.8%	1	2.1%	2	4.2%	48
대구지방법원	84	91.3%	8	8.7%	0	0.0%	0	0.0%	92
부산지방법원	48	72.7%	7	10.6%	10	15.2%	1	1.5%	66
울산지방법원	38	69.1%	11	20.0%	6	10.9%	0	0.0%	55
창원지방법원	22	57.9%	12	31.6%	3	7.9%	1	2.6%	38
광주지방법원	42	84.0%	8	16.0%	0	0.0%	0	0.0%	50
전주지방법원	29	70.7%	9	22.0%	2	4.9%	1	2.4%	41
제주지방법원	17	85.0%	2	10.0%	1	5.0%	0	0.0%	20
합계	798	73.1%	177	16.2%	74	6.8%	42	3.8%	1,091

● 법원별 일반형사합의재판 실형, 집행유예, 무죄, 기타(벌금 등) 현황

[2008.1.1. - 2013.9.30.]

법원	실형		집행유예		무죄		기타		전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5,715	42.9%	4,445	33.3%	1,059	7.9%	2,112	15.8%	13,331
서울동부지방법원	1,485	47.9%	1,112	35.9%	108	3.5%	392	12.7%	3,097
서울남부지방법원	2,058	46.8%	1,673	38.0%	166	3.8%	504	11.5%	4,401
서울북부지방법원	1,663	49.7%	1,138	34.0%	112	3.4%	430	12.9%	3,343
서울서부지방법원	1,326	47.6%	1,057	38.0%	124	4.5%	278	10.0%	2,785
의정부지방법원	2,435	48.1%	1,868	36.9%	141	2.8%	615	12.2%	5,059
인천지방법원	4,158	48.8%	2,922	34.3%	246	2.9%	1,188	14.0%	8,514
수원지방법원	6,274	42.6%	5,844	39.7%	528	3.6%	2,076	14.1%	14,722
춘천지방법원	1,368	38.8%	1,355	38.4%	60	1.7%	742	21.0%	3,525
대전지방법원	3,738	47.7%	2,749	35.1%	184	2.3%	1,166	14.9%	7,837
청주지방법원	1,535	44.6%	1,261	36.6%	77	2.2%	568	16.5%	3,441
대구지방법원	4,366	37.6%	4,360	37.5%	224	1.9%	2,675	23.0%	11,625
부산지방법원	3,894	48.1%	2,993	37.0%	198	2.4%	1,011	12.5%	8,096



법원	실형		집행유예		무죄		기타		전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울산지방법원	992	37.6%	1,111	42.1%	55	2.1%	481	18.2%	2,639
창원지방법원	2,350	39.3%	2,285	38.2%	126	2.1%	1,223	20.4%	5,984
광주지방법원	3,320	36.0%	3,173	34.4%	246	2.7%	2,495	27.0%	9,234
전주지방법원	1,864	44.9%	1,476	35.6%	151	3.6%	659	15.9%	4,150
제주지방법원	620	45.2%	527	38.4%	24	1.7%	201	14.7%	1,372
합계	49,161	43.4%	41,349	36.5%	3,829	3.4%	18,816	16.6%	113,155

나. 대상범죄

▣ 2007. 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정(2008. 1. 1. 시행)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형법」 제144조제2항 후단(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제164조제2항 후단(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제172조제2항 후단(폭발성물건과열 치사), 제172조의2제2항 후단(가스·전기 등 방류치사), 제173조제3항 후단(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 제177조제2항 후단(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 제188조 후단(교통방해치사), 제194조 후단(음용수혼독치사),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9조(상해치사·존속상해치사), 제262조 중 제259조 부분(폭행치사), 제27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유기 등 치사), 제28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체포·감금 등 치사),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5조 중 제301조·제301조의2 부분(미성년자간음추행 상해·치상·살인·치사),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2항 및 제3항(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 제368조제2항 후단(중손괴치사)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뇌물), 제4조의2제2항(체포·감금 등의 치사), 제5조제1호(국고 등 손실), 제5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약취·유인), 제5조의5(강도상해·치상·강도강간), 제5조의9제1항·제3항(보복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배임수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3.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

제2조(대상사건)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사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부정식품제조등),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부정의약품제조 등의 처벌)
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오염물질불법배출)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제1호(마약)

■ 2009. 6. 대법원규칙 개정(2009. 7. 1. 시행)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

제2조(대상사건)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사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부정식품제조등),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부정의약품제조 등의 처벌)
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오염물질불법배출)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뇌물), 제5조의4제2항, 제3항, 제6항(상습강도, 절도), 제5조의10제2항(운전자등폭행치사상), 제11조제1항, 제2항제1호(마약)
4. 「형법」 제297조(강간), 제299조(준강간),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 2012. 1. 법률 개정(2012. 7. 1. 시행)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

제2조 삭제

- 이정현 의원, 전현희 의원, 박은수 의원, 안효대 의원, 최영희 의원,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6건에 대한 위원회대안(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위원회대안 중 대상사건 부분은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안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 제안이유는 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여 실시건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음

법원의 재판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성안 과정에서 연간 100~200건 정도의 형사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제도 시행 뒤인 2008년에는 65건, 2009년에는 94건만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참여대상사건 총 11,498건 중 약 1.4%)됨으로써 당초 예정한 참여재판 시행 사건 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법원의 재판에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고, 사법신뢰 향상을 위해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1심 합의부 사건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 사건은 연간 약 2만건으로 현재와 같은 시행율인 1.4%를 유지하는 경우 연간 약 280건의 참여재판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 의결 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법사위, 본회의 회의록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참여재판 진행 문제 등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전언에 의하면, 당시 선거범죄에 대한 여론재판 우려가 다소 논란되었다고 함
- 당시 법원은 “참여재판을 확대하기 위한 좋은 취지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다” 는 의견 제시¹⁾

다. 배제결정

제9조(배제결정)

-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제303호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2011. 11. 14.자 회의록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예규 ◆

제6조(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

- ④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1.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경우
 2. 피고인에게 정신이상의 의심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현저한 절차지연 등으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배제사유 현황

[2008. 1. 1. ~ 2013. 9. 30.]

적용 법조		배제현황	
		건수	비율
제9조 제1항 제1호	배심원 안전 위협·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1	0.2%
제9조 제1항 제2호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50	10.3%
제9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음	48	9.9%
제9조 제1항 제4호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	388	79.7%

제9조 제1항 제4호의 구체적 사유		건수
피고인측 사정	피고인 측이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	193
	피고인이 정신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	16
	추가기소가 예상되는 경우	4
	구속기간의 만료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경우	6
	피고인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	5
	불구속 피고인의 출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1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경우	2
	의사확인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경우	4
	소 계	231



제9조 제1항 제4호의 구체적 사유		건수
증인측 사정	증인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29
	친족간 범행인 경우(유족의 명예감정을 배려함)	2
	기타	20
	소 계	51
사건의 특성	전부 혹은 대부분 자백한 사건 기타 심리할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	31
	신문할 증인이 너무 많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심리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26
	경미한 사건의 경우	3
	공소장 변경 등으로 혹은 애초부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사건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음(지나치게 잔인한 사건의 경우 등)	7
	공소기각 대상 등 (고소취하 포함)	15
	통상회부결정(참여법률 제11조)	20
소 계	112	

[범죄유형별 배제건수]

범죄유형	2008-2009	2010-2013.9.
강도 등	45	50
성범죄	41	124
살인 등	21	30
상해치사 등	6	18
기타	23	162
특가법위반(절도)		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5
특가법위반(절도)등		11
특경법위반(사기)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4
공직선거법위반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3
문화재보호법위반		3
특가법위반(보복범죄등)등		3
특가법위반(통화위조)등		3
특가법위반(도주차량)등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2
특경법위반(사기)등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2
특수절도		2



범죄유형	2008-2009	2010-2013.9.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등		1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1
특가법위반(영리약취,유인등)등		1
특가법위반(영리약취유인)		1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1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1
현주건조물방화등		1
공용건조물방화미수		1
공용서류손상등		1
배임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등		1
일반건조물방화		1
일반자동차방화		1
절도등		1
중과실치사등		1
특가법위반(무고)등		1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1
특가법위반(횡령)		1
합계	136	349

[공직선거법위반사건 배제현황]

사건번호	범죄사실		
의정부 2013고합102	박근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		
대전 2012고합666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함		
대구 2012고합1210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		

▣ 개방적 배제사유(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사례²⁾

- 재판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 장기간의 심리가 필요하여 배심원의 과중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 피고인이 여러 명이어서 무이유부기피인원의 증가로 배심원 선정기일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2)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2008년), 27-28면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

- 살인사건 등에서 범행방법이나 결과가 끔찍하여 배심원의 직무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
- 사건의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 사건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어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소환하여야 하고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할 배심원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 중요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법원 출석을 확보하기 어렵고 외국에 체류하는 등 언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 관련사건 등의 심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 증인이 많아 1주일 이상 연일개정 등 장기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
- 통상절차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가 대부분 이루어진 후 비로소 공소장이 변경되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배제사유에 ‘자백사건’을 추가하고 개방형 배제사유를 대법원규칙에 구체적으로 한정하자는 안건(의안번호 제 2013-7호)이 제출되어 논의되었으나, 부결됨**

- 부결된 이유는 자백사건도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개방형 배제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경우 재판운영의 탄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음

■ **즉시항고**

-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가능
 - 반대로, 배제결정을 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불복 불가
- 실무상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거의 없음
 - 2008. 1. 1.~2013. 9. 30.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총 12건
-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효력 있음

◆ 형사소송법 ◆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라. 배심원 기피신청

제28조(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기피신청)

③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당해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불선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0조(무이유부기피신청)

①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이하 “무이유부기피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
2. 배심원이 7인인 경우는 4인
3.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

②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③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순서를 바꿔가며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유부 기피신청

- 결격 등 사유가 있거나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원 수 무제한
- 실무상으로는 사건당 1~2명 정도에 불과함

■ 무이유부 기피신청

- 9인형 참여재판 : 검사, 피고인 각 5명
- 7인형 참여재판 : 검사, 피고인 각 4명
- 5인형 참여재판 : 검사, 피고인 각 3명

마. 법관의 의견진술

제46조(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



② 심리에 참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참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참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참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

제41조(평의의 방식)

⑤ 법 제4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심리에 참여한 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관은 ①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전원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배심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다만, 그 경우에도 유무죄에 관한 의견진술은 금지됨
- 최종형태에서는 ‘의견’ 이라고 할 경우 마치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설명’ 으로 용어를 변경함

바. 국민사법참여위원회 활동

■ 사법개혁위원회는 1단계 참여재판제도를 5년 동안 시행해 본 후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형태를 결정하기로 함

■ 대법원은 참여재판 시행 5년차인 2012. 7.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출범

- 법관, 검사, 변호사, 언론인, 대학교수 등 사회저명인사 13명으로 구성

[2013. 3. 6. 기준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명단]

구분	성명	직위(직급)	소속	재임기간
위원장	신○○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7.12.~
법관 위원	김○○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장)		2012.7.12.~2013.2.14.
	조○○	서울고등법원장		2013.3.6 ~



구분	성명	직위(직급)	소속	재임기간
	이○○	사법지원실장	법원행정처	2012.7.12.~
검사 위원	안○○	헌법재판관 (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12.7.12.~2012.9.20.
	김○○	차장검사(검사장)	대검찰청	2012.10.31.~2012.12.13.
	채○○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2012.12.26.~
	백○○	검사장	제주지방검찰청	2012.7.12.~2012.8.1.
	이○○	공판송무부장(검사장)	대검찰청	2012.8.29.~
변호사 위원	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2012.7.12.~
	김○○	대한변협 부회장	법무법인 호민	
법학교수 위원	오○○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식경험 위원	허○○	대기자	중앙일보	
	조○	석좌교수	동국대학교	
	김○○	이사 대우	연합뉴스 논설주간	
	양○○	부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3. 1. 제7차 회의 겸 워크숍(1박2일)에서 13개 개별 쟁점에 대한 종합토론 및 의결하여 최종형태(안) 마련

의안번호	안건명	의결결과
제2013-1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효력' 결정의 건	사실상 기속력 채택
제2013-2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방식' 결정의 건	가중다수결제 채택
제2013-3호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의절차에서 법관의 의견제시' 관련 결정의 건	현행 유지
제2013-4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양형토의 및 의견제시' 관련 결정의 건	현행 유지
제2013-5호	'배심원 평결의 효력, 평결방식, 배심원 평의절차에서 법관의 의견제시, 배심원의 양형토의 및 의견제시' 관련 법률개정안 결정의 건	위 1~4호 통합안
제2013-6호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요건' 관련 결정의 건	신청주의 완화
제2013-7호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관련 결정의 건	현행 유지
제2013-8호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결정의 건	배심원 연령 하향조정(만 19세)
제2013-9호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관련 결정의 건	현행 유지
제2013-10호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 설명' 관련 결정의 건	검사의건 설명 추가



의안번호	안건명	의결결과
제2013-11호	국민참여재판에서 '판결서의 기재사항' 관련 결정의 건	배심원 수, 의견 필요적 기재
제2013-12호	국민참여재판의 '법정구조' 관련 결정의 건	검사 및 피고인 좌석 재배치
제2013-13호	국민참여재판에서 '항소의 제한' 관련 결정의 건	현행 유지

- 2013. 2. 공청회에서 최종형태(안)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 2013. 3. 제8차 회의에서 최종형태(안)에 대하여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³⁾을 반영하여 최종형태 의결

의안번호	안건명	의결결과
제2013-14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 결정의 건	수정의결

- 2013. 6.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종형태를 반영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무부 송부 ⇒ **법무부 입법에 고(~ 11. 20.) 중**

사. 기타

1) 배심원후보자 과태료 부과 관련

- 배심원후보자 출석률은 배심원 구성의 다양화와 직결되어 국민참여 재판의 정당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
 - 불출석을 계속 용인할 경우 가정주부, 무직자, 은퇴자 등으로 편중 우려
- 미국, 일본 등에도 처벌규정 있음
 - 실제로 처벌한 사례는 많지 않음(일본의 경우는 아직 처벌사례 없음)
- 사회 전반적으로 찬.반 양론이 팽팽한 만큼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계도기간을 가지면서 홍보활동을 먼저 강화할 필요 있음

3) 5인형 배심제 폐지,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참여재판 회부 전 피고인에 대한 의견진술기회 부여



2)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 확인절차 누락 관련

- ▣ 2012. 7. 모든 형사합의사건으로 대상사건 확대됨에 따라 실수 발생
- ▣ 국민참여재판장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주의 촉구 중
- ▣ 각 법원 형사실무연구회에서 개선방안 논의 중 - 모든 형사합의사건에 대한 원칙적 공판준비기일 회부(서울중앙지법)

※ 백설공주, 나꼼수 사건은 기준일(9.30.) 이후 선고된 사건이므로 미포함

[위 사건 중 허위사실공표 관련] - 3건

	사건	피고인	선고형	평결/판결	공소사실
1	서울동부 2013고합65	김○○	일부무죄 (공직선거법위반 면소, 명예훼손 무죄) (정보통신망이용법위반 벌금 100만원)	일치	김○○(새누리당) 총선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 비방
2	부산 2013고합125	강○○	무죄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벌금 200만원)	일치	박근혜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 공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적시 비방
3	부산 2013고합292	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일치	박근혜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1. 서울중앙 2012고합1197

1. 공직선거법위반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9. 08:3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5에 있는 서울시청 광장 남쪽 서울시청과 덕수궁 대한문을 연결하는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교통신호기에 “빅조선 인민공화국대장동지 정○○” 명의로 북한의 인공기와 비슷한 모양으로 깃발을 그려 넣고 “남조선 동무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든 진보든 통합당 찍고 [무상교육 100%. 무상급식 100%. 무상보육 100%. 무상의료 100%] 100% 인민의 낙원으로 날래오시라요! (반대세력) 긍정의힘 사/회/정/의/실/천/연/합 후원 촛불시위, 너꼼수, 오마이갓뉴스, 한걸래, 갯향신문, 민주당, 민너당, 민너총, 전교조, 참연대, 그 외 좌파세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가로 4m×세로 2m)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그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함과 동시에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가 금지된 교통신호기에 광고물등을 설치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0. 11:35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5에 있는 서울시청 광장 동편 앞 노상에서 “빅조선 인민공화국대장동지 정○○” 명의로 북한의 인공기와 비슷한 모양으로 깃발을 그려 넣고 “남조선 동무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든 진보든 뭐든 통합당 찍고 [무상교육 100%. 무상급식 100%. 무상보육 100%. 무상의료 100%], 인민의 낙원으로 날래오시라요! (반대세력) 긍정의힘 사/회/정/의/실/천/연/합 후원 너꼼수, 오마이갓뉴스, 한걸레, 갯향신문, 민주당, 민너당, 민너총, 전교조, 참연대, 좌파세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가로4m×세로2m)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그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2. 수원2012고합768 ⇒ 김진표 비방

1. 2012. 2. 26.자 범행(시설물 설치, 서명운동,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제19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2. 2. 26. 12: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3에 있는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김진표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김진표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 'X맨 공천반대 한미FTA 통과시킨 수원시민이 막자구요'라는 피켓 1개를 게시하고, 김진표 국회의원 공천반대를 위한 수원시민 1,000인 서명운동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2. 2. 29.자 범행(시설물 설치, 서명운동, 확산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0여 명과 함께 제19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2. 2. 29. 19:00경 수원시에 있는 에이케이플라자 앞 광장에서, 김진표의 성명을 명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 '김진표 아웃, 민주당 혁신, 경제 민주화', '한미 FTA 날치기 방조! KBS 수신료인상 야합! 재벌특혜조장! 민주통합당 X맨! 공천하기 있기? 없기!'라는 피켓 2개를 게시하고, 김진표 국회의원 공천반대를 위한 수원시민 1,000인 서명운동에 서명을 받고, 확산장치를 이용하여 '김진표, 남경필이 공천을



받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낙선운동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2012. 3. 13.자 범행(시설물 설치,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0여 명과 함께 제19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2. 3. 13. 13:00경 김진표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김진표의 성명을 명시한 'X맨이 야권 단일 후보? 김진표 후보는 야권단일후보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김진표의 성명을 명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김진표 공천X 수원여성회', '원칙없는 단일후보공천! 민의를 무시한 단일후보 공천! 김진표 공천철회를 요구한 수원 YMCA', '수원시민 자존심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퇴하면'이라는 피켓 3개를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야권 단일후보로서 그리고 제19대 국회에 입성할 수 없는 자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김진표 공천을 철회하라, 김진표는 야권 단일후보 아니다, X맨은 물러가라'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현수막 및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4. 2012. 3. 17.자 범행(시설물 설치,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0여 명과 공모하여, 제19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2. 3. 17. 14:00경 김진표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김진표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한미 FTA 통과 협잡한 당신이기에 빅엿 드리리'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김진표의 성명을 명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한미 FTA 환상의 짝궁!(김진표 국회의원과 남경필 국회의원의 사진이 들어감)', 'X맨 선거사무실 개소식 축하해요~ 선물드려요! 새누리당 입당원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챙겨왔어요~! 한미 FTA 소울메이트, 경필이가 거기있걸랑요~!', 'X맨 선거사무실 개소식 축하해요~선물드려요! 인기☆LED 귀이개 경필이랑 사이좋게 파세요 그래야 시민들 목소리가 들릴꺼니까요', 'X맨 선거사무실 개소식 축하해요 선물드려요 실업인정 신청서 필요하실 것 같아 미리 가져왔어요~! 한미 FTA 소울메이트 경필이꺼두 저희가 챙길게요, 걱정하지 마삼~, 'X맨 선거사무실 개소식 축하해요~ 선물드려요! 자이로드롭 이용권 떨어지는 맛이



끝내줘요! 가실 땐 경필이 꼭 데려가세요~!', 'X맨 선거사무실 개소식 축하해요~ 선물드려요! 옛 옛이나 먹으렴... 한미 FTA 소울메이트, 경필이랑 사이 좋게 나눠드삼~'이라는 피켓 6개를 게시하고, 확장장치를 이용하여 '부자들을 위한 정책 한미 FTA 통과시키고, 제발 김진표에게 불협하고 새누리당에 불협하십시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현수막 및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장장치를 사용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서울중앙 2012고합1137 ⇒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 비방

1. 2012. 3. 19.자 각 광고 게재의 점

피고인은 2012. 3. 19. 그 날짜로 배포된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각 30면 하단에 '대국민 경계령 북한헌법 3, 8조가 규정한 사람중심이 전국에 범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전략) 총선을 앞두고 '진보'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진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945년부터 쓰인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은 남한의 역사를 '진보와 보수반동 사이의 대결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보수반동은 미제와 그 앞잡이인 파쇼정권에 순종하는 바보들인데 반해 '진보'는 주체사상을 터득하고 민족통일을 위해 반미-반파쇼 투쟁에 몸 바치는 애국자로 정의했습니다. (중략)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진보'가 되는지 아십니까? 연구결과에 의하면 반골의 DNA를 타고 난 사람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기보다 잘나고 잘사는 사람들을 배아파하는 소영웅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진보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사회에 대해 '한'과 적대심을 키웁니다. 그래서 행동이 거칩니다. 이들이 한을 푸는 방법은 그들이 증오하는 남한사람들을 북한이라는 살인기계로 처단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만 풀면 자기들이 죽어도 좋다합니다. (중략) 갈아엎자, 점령하자, 보복하자! 지금 진보들의 구호가 더 없이 강경해 졌습니다. 2007년 노무현 밑에서 한자리를 했던 사람들, 정동영, 한명숙, 손학규, 유시민 등은 FTA를 도전의 기회라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열변을 토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아주 크게 건설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두를 갈아엎어야 한다며 몸싸움에 나섰습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되는 특수인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동영은 정권이 바뀌면 손 불 사람이 있다하고, 또 다른 51세의 여성 골수 좌익은 '통일되면 죽일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다가 지난 2월 15일경 검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정동영은 3월 7일 제주도

에 건너가 정○○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장(준장)에게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가 이긴다. 그때 책임을 물을 것이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해군 준장이 '정동영 살생부'에 오른 것입니다. (중략) 대한민국 잘 되자고 하는 FTA, 한미연합, 해군기지, 원자력발전소 등을 뒤엎자는 것은 역심을 품은 진보들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끝내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대한민국 자체를 뒤엎어버리고 적화통일 이룩하겠다는 것이 진보의 목표입니다. 진보는 국가를 북에 넘기려는 사람들이고, 보수는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진보'를 경계하십시오. (후략)"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2. 2012. 3. 21.자 각 광고 게재의 점

피고인은 2012. 3. 21. 그 날짜로 배포된 조선일보 34면, 동아일보 31면, 서울신문 30면 각 하단에 '총선 앞에 대선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총선에서 어른들의 투표가 참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총선에서 진보-민주 등 종북좌익들이 국회에서 개헌선을 확보하면 12월 대선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설사 박정희 같은 위대한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그는 국회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제2의 월남처럼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직 대통령을 통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 뿐, 종북좌익들이 점령한 국회에 대해서는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대선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은 그야말로 예측불허이며 대선구도는 총선 결과에 따라 전혀 단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을 말하는 것은 에너지 소모입니다. 오직 총선에만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찍어 줄 정당이 없다며 이번 총선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이는 안 됩니다. 설사 찍어줄 정당이 마땅치 않더라도 찍어줘야 할 만한 인물은 비 진보 및 무소속 등에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중략)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원자력발전소 등은 대한민국에 매우 유익한 존재들입니다. 탈북자 복송반대 등 북한인권은 사람의 탈을 썼다면 반드시 시정시키는데 참여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민주 진보 등 종북좌익들은 기어이 이들 모두에 반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더러운 정권이며 민족과 역사의 전통성이 북에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적화통일 돼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라면 무조건 파괴-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진보의 상징인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 손학규는 똑같은 내용의 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참으로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이 추진한 것은 애국ियो, 이명박이 추진하는 것은 매국이다.' 진보당의 한 인구는 우리의 소중한 '해군'을 '해적'이라고 표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면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정부에 대한 반감을 이번 투표

에 반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난해 11월 19일 밤 진보의 거두라는 정동영은 이종걸과 함께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하여 종북좌파들에 호소했습니다. '촛불이 5만 개가 되면 한나라당은 놀라서 FTA 비준안 강행 처리를 못할 것이다. 국회 담장 길이가 2,400m다. 비준안 강행처리가 예상되는 24일 국회로 와서 담장을 에워싸 달라. 5만 명이면 된다.' 이처럼 진보의 거두들은 폭력을 가까이 하고 공중부양도 잘하고 전기톱도 잘 다룹니다. 이런 정동영이 노무현 시절에는 FTA 체결에 가장 앞장섰던 사실, 기억들 하십니까? 그는 노무현 시절 NSC 상임위원장, 통일부 장관, 열우당 대표를 지낸 후 대통령 출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여당 대표를 맡던 시절 그는 '한미 FTA가 완성되면 향후 50년간 한미 관계를 지탱시켜줄 기둥이 두 번째로 생겨나는 것'이라며 FTA의 거룩한 전도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내가 잘 몰랐다. 하지만 지금 보니 한미 FTA는 한국을 미국의 5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진보는 또 김○○ 통상교섭본부장을 향해 '제2의 이완용'이라는 막말을 했고, 'FTA를 을사늑약'이라고 했으며 'FTA 협정이 성립하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나 다를 바 없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은 정동영이 이완용을 쏙 빼닮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동영뿐만 아니라 모든 진보세력이 이완용을 빼닮았습니다. 이완용은 처음에 '한일합방'에 반대했습니다. 한일합방이 싫어서가 아니라 '합방론'을 먼저 들고 나온 송병준에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일합방에 반대했던 이완용은 새로 부임한 데라우치를 찾아가 자기가 한일합방에 앞장서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주도권을 확보하자 국가는 없고 오로지 자신의 영달만 있었습니다. 다른 편이 하면 애국이고 무엇이고 무조건 반대하는 붉은 색 사람들을 우리는 어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사생결단 자세로 총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찮다 하시면 나라가 망합니다. 유태인도 월남국민도 싸우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3. 2012. 3. 28.자 광고 게재의 점

피고인은 2012. 3. 28. 그 날짜로 배포된 조선일보 34면 하단에 '북한헌법 3, 8조가 규정한 사람중심이 전국에 범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전략) 총선을 앞두고 '진보'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진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945년부터 쓰인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은 남한의 역사를 '진보와 보수반동 사이의 대결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보수반동은 미제와 그 앞잡이인 파쇼정권에 순종하는 바보들인데 반해 '진보'는 주체사상을 터득하고 민족통일을 위해 반미-반파쇼 투쟁에 몸 바치는 애국자로 정의했습니다. (중략)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진보'가 되는지 아십니까? 연구결과에 의하면 반골의 DNA를 타고 난 사람들, 열등의식을 가지



고 자기보다 잘나고 잘사는 사람들을 배아파하는 소영웅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진보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사회에 대해 '한'과 적대심을 키웁니다. 그래서 행동이 거칩니다. 이들이 한을 푸는 방법은 그들이 증오하는 남한사람들을 북한이라는 살인기계로 처단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만 풀면 자기들이 죽어도 좋습니다. (중략) 갈아엎자, 점령하자, 보복하자! 지금 진보들의 구호가 더 없이 강경해 졌습니다. 2007년 노무현 밑에서 한자리를 했던 사람들, 정동영, 한명숙, 손학규, 유시민 등은 FTA를 도전의 기회라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열변을 토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아주 크게 건설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두를 갈아엎어야 한다고 몸싸움에 나섰습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되는 특수인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략) 대한민국 잘 되자고 하는 FTA, 한미연합, 해군기지, 원자력발전소 등을 뒤엎자는 것은 역심을 품은 진보들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끝내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대한민국 자체를 뒤엎어버리고 적화통일 이룩하겠다는 것이 진보의 목표입니다. 진보는 국가를 북에 넘기려는 사람들이고, 보수는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진보'를 경계하십시오. (후략)"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 예정인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일전 180일 이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을 반대하는 광고를 각 배부하였다.

4. 서울중앙 2012고합1394

피고인은 김○○, 정○○과 함께 위 선거의 선거기간 중인 2012. 3. 29. 19: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유성칼국수 식당에서 '미권스' 카페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서울 강남지역 모임"을 개최하고, 식당 내에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서울 강남지역 모임"이라는 현수막과 "강남은 밝아서 죄송합니다. 정동영 후보와 강남 미권스 간담회"라는 인쇄물을 게시하였으며, 같은 날 21:30경 위 식당에 도착한 정동영에게 "여론 조사가 열세인데 그 역전 전략은 무엇인지"를 비롯한 선거 정책과 전략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정동영으로부터 그 답변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정동영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정○○과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미권스' 카페 회원들의 서울 강남지역 모임을 개최하고, 정동영 후보자와의 좌담회를(이하 위 모임 겸 좌담회를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 개최하였으며, 정동영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5. 서울남부2012고합660

피고인은 2012. 4. 13.경 위 양천신문사에서,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양천신문 3월 26일자 1면 「“네거티브 선거전, 영원히 추방할 수 없나”」 및 4월 2일자 1면 「신정네거리 ‘정치1번지’ 방불... 박근혜·손학규, 후보 지원」 기사와 관련하여 2012. 4. 16. 까지 사과문 게재를 명한다.”라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6. 서울남부2012고합985

피고인은 2012. 12. 7. 23: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곳 철제울타리에 설치한 제18대 대통령선거후보자 7명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7. 서울북부2013고합66

1. 투표지 촬영

피고인은 2012. 12. 13. 또는 그 다음날 12:00경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홀 1층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문재인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피고인은 2012. 12. 14. 20:28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중략) 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경희대학교 72학번인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문재인을 지지하는 ‘문재인을 사랑하는 경희인 모임’ 카페 회원들이 주축인 그룹채팅방에 들어가 233명과 채팅을 하던 중 “한 표 행사하러 갔습니다”라고 말한 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전송하여 공개하였다.

8. 서울동부2013고합65 ⇒ 김○○(새누리당) 비방

피고인은 2012. 3. 16. 17:45경 김○○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플라워(kmj2747)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새누리당에서 공천한 김○○에게 성폭행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김○○ 교수가 성동갑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때 여성당직자로서 직책을 맡고 있었고 김○○ 교수는 당협위원장의 지위를 내세워 저를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제가 기지를 발휘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강간당했을 것입니다.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9. 부산2013고합125 ⇒ 박근혜 비방

1.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2. 7. 17. 19:40경 부산 해운대구 (중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 중 정치토론방에 아이디 'kschbsm01'을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박근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갱년이 닥그네를 첩난처럼 씹어 돌려도.. 멀쩡한 이유가..'라는 제목으로 '숨겨준 자식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녀??? 친자 확인을 해봤음 좋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박근혜에게 불리하도록 동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8. 31. 2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 중 토론방에 글을 게시하여 위 박근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동인에게 불리하도록 동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후보자비방

피고인은 2010. 8. 2. 16: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 중 정치토론방에 아이디 'ksch0064'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박근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쥐명박과 근혜년이 보수집단의 쌍두마차라고 하는데....'라는 제목으로 '한 녀름은 쪽발이 천황에게 대갈통 쪼아리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의 간첩 수준의 발언을 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온갖 사기질로 범벅이 된 녀름이고, 또 한 녀름은 대갈통에 총알 박히고, 얼굴에 칼 맞고 심심하면 뽕맞는 집구석이고, 이거이 완전 조폭들이 하는 꼬라지 아닌가? 이런 조폭 집단이 지금도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박근혜를 비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9. 19. 1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 중 토론방에 글을 게시하여 박근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을 비방하였다.

10. 서울남부2013고합76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12. 3. 12. 서울자유교원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www.kltu.or.kr) 보도자료란에 글쓴이 최고관리자 명의로 '통합진보당의 10석 보다 진보신당의 1석이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님, 웃는 얼굴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



로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특정 정당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과 반대하는 표현을 반복 계속적으로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11. 서울중앙2013고합305

피고인은 2012. 12. 10. 동아일보 35면에 '대한민국대청소 500만야전군 의장 지○○' 명의로 "국민모두가 '사람'인데 웬 사람타령인지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전략) 오늘은 '사람' '진보' '민주화'가 '좌파들끼리만 통하는 암호'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 의미들을 해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략) 전국의 현수막들에는 '사람중심'이니 '사람우선'이니 하며 '사람'이라는 단어가 도배돼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북한에서는 '사람중심철학'이라 부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철학! 국민들은 '사람이우선'이라는 단어가 매우 좋다며 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사람'은 우리가 아는 의미의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등 무산계급'만을 의미합니다. 주체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북한헌법이 2009년 4월 9일에 개정됐습니다. 북한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국가라 규정했고, 제8조는 북한사회 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략) 무산계급이 사람답게 살려면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남한에는 식민정책을 쓰는 미국이 있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가 있고, 무산계급이 살 길인 주체사상을 탄압하는 파쇼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파괴해야만 사람 사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386주사파를 포함한 자칭 '진보'들이 미국과 재벌과 남한정부를 증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3개의 적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이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화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중략) 김일성은 해방직후부터 김일성 추종자들을 진보, 그 반대자들을 보수반동이라 불렀습니다. (중략) 지금도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분열돼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진보와 보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이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는 많은 국민들은 아무런 사색과정 없이 세뇌되어 '보수는 구태의연한 사람들, 진보는 신선-청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를 이해하신 후 시국을 바라보시면 본질을 읽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좌파들끼리는 '민주화' '진보'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 위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파괴하고 미국을 몰아내고 재벌을 해체하자는 말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국민들은 이 모든 단어들 좋은 단어라고만 생각하며 저들 장단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의 암호 말 '사람' '진보' '민주화' 그게 뭔지, 이제 학습이 되셨습니까?"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먼저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를 배부하였다.

12. 부산2013고합292 ⇒ 박근혜 비방

피고인은 2012. 8. 19.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중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안경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한겨레 토론마당’에 접속한 후 ‘한빛농사꾼(hanbit0990)’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칠푼아 숨겨논 사생아 저거 우짤겨?~~(충격증거)」라는 제목으로 “아빠보다 나이 만은 마누라 6명 인는 무당할배 초테민이와 부도덕한 불륜 서방질로 붙어묵어 사생아까지 낳은 과거를 없었던거로 하고 한국과 결혼해 세습할 아들이 없어 정말 욕심 없는 진짜 숫처녀라 거짓말 은폐 조작을(...중략...) 저번 칭아대에서 보톡스에 차떼기 머리나쁜 수첩 칠푼이 할마시와 단독비밀회담에 해외유인 납치 살인미수 사건의 증거인멸, 5촌 가족 칼부림 살인극을 없었던 거로 만들어 주고, 마음대로 해묵고 가라 대신 방해하지 않기, 몽준이 제껴두고 검찰, 경찰, 법원, 국회, 국정원 공권력 이용해 유출 당원명부 이용, 댓글 알바동원, 여론조작, 언론조작, 디도스 개표전산조작 부정선거로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당선만 시키도고...내가 다음 정권으로 보호해주께...빅딜의 결과로 보면 됩니다. 천하에 나쁜 독립군 때려잡은 혈서맹세 친일매국, 쪽바리 앞제비, 친북좌파, 남로당 군사총책 여순반란 양민학살 간첩 두목(...중략...) 마약, 고소, 고발, 조폭강패동원, 총칼로 강탈 도둑질해 빼앗은 수조억짜리 장물 더러븐 세습 재산싸움 “한국과 결혼해 세습할 아들이 없어 정말 욕심없는 숫처녀다” 가증스런 거짓말로 우롱하여 국민기만, 부도덕 불륜 서방질 초테민이(6+1) 숨겨논 사생아 아들 들통나 뽀롱(...중략...) 만경대서 선물꺼정 바치고 찬양하며 덩실덩실 춤 춘 “2세끼리 잘해보자” 김정일 장군 지령 받은(남파 후 주적삭제 성공, 보안법 폐지 시도 중 간첩질 뽀롱 실패) 보톡스에 찌든 차떼기 머리 나쁜 수첩 천박한 칠푼이 할마시 존말 할 때 북으로 가라!!!”라는 허위 내용의 글과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만평 그림을 함께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9.경부터 2012.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박근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 이하 ‘후보자’라고만 한다)에 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후보자인 박근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박근혜와 최태민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있다거나 박근혜가 청와대의 비밀회담을 통하여 5촌 가족 칼부림 살인극 은



폐를 시도하고 북한의 김정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 행위를 하였다는 것 등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의 범행을 함으로써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박근혜와 최태민 사이에 아들이 있었고 박근혜가 5촌 가족 칼부림 살인극 은폐에 개입되어 있다거나 북한의 김정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박근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각각 공표하였다.

13. 서울중앙2013고합306 ⇒ 문재인지지

피고인은 2012. 12. 14.자 경향신문 15면 전면에,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소설가 137명' 명의로 상단에는『강은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 - 우리의 역사도 강처럼 흘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좌측에는 "(전략) 여기 137명의 젊은 시인과 소설가들이 잠시 붓을 놓고 분연히 모였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또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에게겐 스스로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략)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를 과거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강은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 (후략)"라는 글을 기재하고, 우측에는『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 - 그로써 자유의 영토가 한 뼘 더 자라나리라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5년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삶의 고통이 더해지고 삶의 가치가 몰락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철거민들은 망루에서 검은 연기로 타올랐고 노동자들은 철탑 위에 등지를 틀어야 했으며 누천년을 휘돌아가던 강은 혼탁한 수로가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언론탄압이 자행되었고 사라진 줄만 알았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되어 우리 모두를 경악케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쌍용차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으며 아름답기 그지없던 갯바위는 전쟁의 기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절망과 죽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시인과 소설가들은 조금이라도 삶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조금이라도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세상을 바랍니다. 우리는 그 출발이 정권교체에 있음을 절실히 공감하며 그것을 위해 잠시나마 각자의 작업실에서 나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시와 소설을 쓰던 손으로 선언문을 써야할 때의 열패감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이 세계의 몰락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진보적인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약자의 신음에 더 잘 귀 기울일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에 절망하여 이 세계를 원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시대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절망이 아닌 희망을 파종하는 대통령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 답은 정권교



대가 아닌 정권교체입니다. 강○○...휘○ (이상 137명)”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민주통합당의 문재인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를 배부하였다.



II.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공소장변경 허가

가. 사건진행 현황

▣ 원세훈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7 공직선거법위반 등

- 형사 21부 : 재판장 이○○, 이○○(주심), 오○○
- 6. 14. 접수
- 공판기일
 - 8. 26.(1차) 9. 2.(2차) 9. 9.(3차) 9. 16.(4차) 9. 23.(5차) 9. 30.(6차) 10. 7.(7차) 10. 14.(8차) 10. 21.(9차) 10.30.(10차) 실시
 - 11. 4.(10차) 예정

▣ 이 사건 공소장은 다음과 같이 7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제1항 :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 제2항 : 국정원의 직무범위
- 제3항 : 피고인의 국정원 운영 방침
- 제4항 : 사이버 국정홍보의 강화와 심리전단의 확충
- 제5항 :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지시
- 제6항 : 심리전단 직원들의 구체적인 범행 내역
 -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여명의 직원이
 -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와 같이 총 5,694회에 걸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함
 -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범죄행위를 실행함과 아울러
 -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 범죄행위를 실행함



- 제7항 : 결어

- 피고인, 3차장, 심리전단장, 사이버팀 팀장 및 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
-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아울러
-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함

-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는 공직선거법위반(255조 3항 2호), 국정원법 위반(18조 1항), 공동정범(형법 30조), 상상적경합(형법 40조)임

- 범죄일람표 기재 약 3년간의 5,694회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봄

-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의하여 추가된 범죄사실은 위 '제6항의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트위터를 이용한 범죄사실'**

- 사이버팀 직원 김○○이 2012. 9. 1. 트위터 계정에 ‘민주, 안철수, 보 조금 152억 받으려 눈속임 정당 만드나...’ 라는 글을 게시함을 비롯하여, 2012. 9. 1.부터 2012. 12. 18.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트위터에서 5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 **공소장 변경 허가**

- 2013. 10. 30. 공소장변경 허가결정
-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인정” ⇨ **공소사실 자체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지, 유무죄 또는 범죄성립 가부 판단을 한 것 아님**

나. 관련 법리

1) 허가의 절차

- **법원의 허가사항임 (다만, 기속재량)**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 ▣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판결에 대한 상소를 통해 불복**

형사소송법

제403조(판결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2) 검찰 내부의 보고·승인 누락의 효과

- ▣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검찰 내의 승인절차 있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8조(승인등)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검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및 공소장 변경등과 상소 여부
2.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 ▣ **다만, 이는 검찰 내부의 규범으로서, 당해 소송행위의 외부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임**

3)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 ▣ **공소장 변경의 요건은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 ▣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은 실체법상 죄수 이론과 완전히 궤를 같이 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두 가지 판단은 서로 유사한 결론을 가져옴**

-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별개의 사실의 경우 기본적 사실도 동일하다고 볼 것이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의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도 동일하지 않다고 볼 것임

4) 공소시효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국정원법위반죄의 상상적경합임

■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임 (13. 6. 19.)

● 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국가정보원법은 별도의 공소시효 없음

■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의 정지는 범죄사실 전부에 미침

형사소송법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 ①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의 정지는 공소효력의 범위에 따라 객관적으로 실체법상 1죄를 구성하는 범죄의 전부에 미침



III. 국정원 사건 관련 위법압수수색 논란

가. 배경

- 국정원사건 수사팀은 원세훈에 대한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⁴⁾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공소장을 변경
- 공소제기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수소법원에 속하게 되므로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됨

나.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4. 26. 선고 2009도10412 판결 ◆

형사소송법은 제215조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관련 법규의 체계, 문언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사안의 내용 ◆

-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100만원권 ①, ② 수표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기소함
- 검사는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아닌 영장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이 100만원권 ③ 수표를 추가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공소장을 변경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당초 기소된 범죄사실(①, ② 수표 수수)이었음
- 당초 기소된 ①, ② 수표 수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③ 수표 수수 부분은 수소법원 아닌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죄 선고

4) 당직판사로 추정됨



다. 검토

1) 이 사건과 관련판례 사안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들(사이버팀 직원 4명)은 피고인(원세훈)이 아님**

■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은 당초 기소된 범죄사실과 다름**

● 당초 기소된 범죄사실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오늘의 유머’, ‘다음 아고라’, ‘다음 카페 안티 MBC’ 등 다수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된 글에 대하여 찬성·반대의견을 표시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함

●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SNS(트위터 등)와 인터넷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된 글에 대하여 찬성·반대의견을 표시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함

2) 별건수사 여부

■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는 당초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한하고, 별건수사의 경우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님⁵⁾**

■ **별건수사인지 당초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후 수사인지 여부는 문제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⁶⁾**

■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은 당초 기소된 범죄사실과 다름**

■ **설령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이 당초 기소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5) 2009도10412 사건의 연구관검토보고서, 30면

6) 위 연구관검토보고서, 31면



관계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보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들은 피고인이 아니라 공범인 부하직원들임

-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에 대하여 관련판례가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3) 결론

- 형식상으로는 관련판례가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실질적으로는 관련판례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하직원들을 피의자로 내세워 별개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증거능력 배제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이 사건 압수수색은 처음부터 원세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추가 등 공소장변경을 염두에 둔 압수수색이라는 의심이 강함
 -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중 '구체적인 범죄실행 부분(트위터 등)'을 제외한 '원세훈 피고인의 국가정보원 운영방침, 원세훈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지시' 등 나머지 부분(범죄사실 본문 16페이지 중 14페이지 정도)은 원세훈 피고인에 대한 기존 공소사실과 완전히 일치
- 본안에서 관련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증거능력의 배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됨



IV. 재정합의부 운영 관련

가. 형사재판에서의 재정합의 제도의 취지와 운영현황

1) 재정합의 제도

▣ 합의부의 심판권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아래에 열거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가. 삭제 <1999.12.31>

나. 형법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와 그 각 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1항·제2항의 미수죄에 한한다),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라. 병역법 위반사건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제4항·제5항(제1항·제4항에 해당하는 죄에 한한다),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관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단독 관할 사건에 대하여 합의부가 결정을 하면 합의부에서 심판할 수 있음 ☞ 재정합의 사건

▣ 재정합의 제도의 취지

- 합의부 관할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사회적



인 파장이 크고, 단독판사 혼자 심리하기 어려운 사건’ 이라도 법정형이 낮을 경우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재판하게 됨으로써 사안에 따라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상실할 우려 있음 ⇒ 재정합의 재판을 함으로써 **신중하고 합리적인 심리를 추구함**

■ 재정합의 대상 사건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이하 ‘사무분담 예규’)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나. 재정합의 제도의 운영 형태

1) 제도에 대한 비판론 또는 기존의 저조한 활용

■ 단독판사의 재판권 침해 문제 (외부적 문제)

- 법원장 등 사건배당주관자가 중요 단독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하는 경우 - 단독판사의 재판권 침해 문제 제기 가능

■ 일을 회피한다는 측면의 문제 (내부적 문제)

- 단독판사가 어려운 사건을 합의부로 떠넘기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

■ 법원장 등은 재정결정부 회부 자제, 배당받은 단독판사도 재정합의 결정에 소극적



2) 재정합의 활성화의 필요성

- ▣ 일부 단독판사의 소위 '튀는 판결'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 저해
- ▣ 동일 유형의 사건에 대한 통일적 처리 필요성
- ▣ 중요 사건에 대한 합의체에 의한 신중한 심리 필요성

3) 제도 운영 형태

- ▣ 재정합의 제도의 이원적 운영 (사건배당 확정 전, 확정 후)
- ▣ 사건배당 확정 전 (사무분담예규 제12조 제1항)
 - 사건배당 주관자가 재정결정부에 재정합의 여부를 회부
 - 실무상 미리 구체적이고 확정된 기준을 공표함으로써 배당권자의 자의적 관여 배제
 -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
 - 사건배당 확정 전에는 부패범죄와 구속적부심 사건에 대하여만 일괄적으로 재정합의결정 ⇨ 사실상 법원장 또는 수석부장판사의 관여 여지 없음
- ▣ 사건배당 확정 후 (사무분담예규 제13조)
 - 단독판사가 합의부 구성원인 경우
 - 단독판사가 재정합의 회부, 당해 합의부에서 재정합의 결정, 원칙적으로 당해 단독판사가 주심판사가 됨 ⇨ 사건을 회피하지 않는 결과
 - 단독판사가 합의부 구성원이 아닌 경우
 - 재정결정부로 회부하여 재정합의 여부를 결정받음

4) 법원행정처의 활성화 대책

- ▣ 재정합의 제도의 본래의 취지(중요사건에 대한 신중한 심리)를 살리고, 비판론을 보완함



▣ 2010. 2.부터 전국 주요 법원에 **모든** 형사단독 판사들이 소속된 재정 합의부 설치

- 단독판사가 사회적 파장이나 관련 사건의 일관된 처리 등을 희망할 경우 스스로 자신이 속한 재정합의부에서 재판¹ 떠넘긴다는 인식 불식

▣ 사건배당 전 배당권자에 의한 재정합의 회부는 예외적으로만 활용

▣ 재정합의 대상사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사무분담 예규)

5) 재정합의부의 실질적 합의체 운영

▣ 재정합의부에 부장판사 1인을 배치한 것은 법원조직법 규정 때문

법원조직법

제30조(부)

②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부)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

③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 재정합의부의 경우, 합의부의 배석판사는 고참 단독판사에 해당하는 형사단독판사임

- (예) 서울중앙지법 인적 구성

- 부장판사 : 20기~23기
- 형사단독판사 : 28기(5명), 29기(1), 30기(2), 31기(2), 32기(2), 33기(1)
- 민사단독판사 : 대체로 32기~35기
- 일반 합의부 배석판사 : 36기~41기
- 경력상향 재판부(대등재판부, 항소부) 배석판사 : 30기~31기

▣ 일반 합의부의 부장-배석 관계가 아닌, 자신의 사건을 주심판사로 맡아 실질적으로 합의를 하는 형태로 운영함 (대등재판부보다 더 높은 기수의 배석판사)



-
- 신중한 재판을 위하여 3인이 합의체를 구성하여 재판하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한 것일 뿐, 단독판사가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재판권을 포기하면서 재정합의에 회부하는 것 아님
 - 재정합의부의 부장판사가 사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님



예상질의 2 - 각 실 · 국별

【사법지원실-민사】

I. 4대강 정비사업 관련 재판 경과

1. 4대강 정비사업 사건 개요

가. 당사자

- 1) 원고 : 환경상 이익 침해 영향권 안과 밖에 거주하는 사람
- 2) 피고 : 국토해양부장관(보조참가인 : 한국수자원공사), (서울 · 대전 · 부산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대상

- 1) 국토해양부장관 :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정부기본계획(서울 · 부산) 또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전주), 한강살리기 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⁷⁾
- 2) 지방국토관리청장 :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⁸⁾

다. 재판 결과(공통)

- 1) 집행(효력)정지 신청기각(확정) :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⁹⁾(한강)

7)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영산강 부분은 대법원 2011. 8. 9.자 2010무122 결정(전주), 낙동강 부분은 대법원 2012. 5. 25.자 2012무43 결정



- ▣ 토지 수용, 타지 이주, 유기농업 사실상 해체 ⇨ 금전 보상 가능 손해, 금전보상으로
는 참고 견디기가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 불해당
- ▣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대상
- ▣ 소수의견 : 재항고이유(‘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한 필요’의 의미를 종전과
다르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여야 함

2) 소각하

- ▣ 환경상 이익 침해 영향권 밖에 거주하는 사람 : 처분 취소를 구할 법
률상 이익 없음
- ▣ 정부기본계획(또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아님 ⇨ 행정처분 불해당

3) 청구기각

- ▣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장
모두 배척

라. 결정 목록(대전 · 부산 · 전주 생략)

구분	신청 경과		
	1심	2심	3심
서울 (한강)	서울행법 2010. 3. 12., 2009아3749 (신청기각)	서울고법 2011. 11. 25., 2011누5775 (변경 - 일부 신청각하, 나머지 신청기각)	대법원 2011. 4. 21., 2010무111(全) (재항고기각)

마. 판결 목록

구분	소송 경과		
	1심	2심	3심
서울 (한강)	서울행법 2010. 12. 3., 2009구합50909	서울고법 2011. 11. 25., 2011누5775	대법원 2011두32515 (계속 중)

(부산)으로 재항고기각(확정). cf. 금강 부분은 집행정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구분	소송 경과		
	1심	2심	3심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	(항소 기각)	
대전 (금강)	대전지법 2011. 1. 12., 2009구합4557 (청구기각)	대전고법 2012. 1. 19., 2011누288 (항소 기각)	대법원 2012두4531 (계속 중)
전주 (영산강)	전주지법 2011. 1. 18. 2009구합2785 (청구기각)	광주고법(전주) 2012. 2. 15., 2011누94 (항소 기각)	대법원 2012두7486 (계속 중)
부산 (낙동강)	부산지법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	부산고법 2012. 2. 10., 2011누228 변경(소각하 또는 청구기각) :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하자 있으나 사정판결로 청구기각	대법원 2012두6322 (계속 중)

2. 항소심 판결 요지

가. 청구원인 개요¹⁰⁾

요지		내용
절차	하천법 - 상의계획과의 정합성 결여 -	① 상위계획(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나 유역종합치수계획) 범위 일탈 ② 하천법상의 치수계획수립절차,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지역주민 청문절차, 지역 시도지사와 협의 거치지 않음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 조사 미 실시 - 국가예산이 22조 2천억 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어 있는 국책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¹¹⁾ 및 그 시행령 제13조 제1항 ¹²⁾ 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됨 - 보 설치 및 준설 부분은 ‘재해예방 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10) 집행정지 신청사건 전원합의체 결정의 소수의견 판시요지와 대부분 부합

11)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요지		내용
		제2항 제6호의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인 ‘재해예방 지원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0호는 그 자체로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인 조항이어서 이를 적용한 당해 처분은 위법함
	환경영향평가법	① 불충분한 대안검토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대안(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였음 ② 수질 부분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 사업의 시행으로 수질이 오염될 것이라고 우려할 만한 사유가 적지 아니한데도,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그와 같은 우려를 해소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중 수질 부분은 부실함
	문화재보호법	수중지표조사 미실시 등으로 문화재지표조사 부실하고 유명무실
실체	하천법 - 재량권 일탈·남용 -	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실질적으로 운하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재해예방사업이 아니고, 홍수예방이나 수질개선과도 무관하며, 용수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②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을 입안·결정 시 관련자들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 않음
	한국수자원공사법	4대강 정비사업 중 8조 원 규모의 댐, 보 및 그 인접 공구 등 중요구간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사업’으로(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것이 아님)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법상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벗어남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을 말한다.



나. 판결이유

1) 부산고법

- ▣ 재판부는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함
- ▣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국가재정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
 - 500억 이상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대규모 국책 사업이라도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살려야 함
 -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은 모범인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임
 - 낙동강의 보 설치와 준설사업은 수자원 확보 목적이 재해예방 목적이 아님
- ▣ 다만, 4대강 사업이 90% 이상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능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선고함

2) 서울고법 · 대전고법 · 광주고법(전주)

- ▣ 서울고법을 비롯한 다른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부정
 - 재해예방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 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6. 재해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않도록 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님

- 국가재정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산편성 자체의 하자가 될 수 있을 뿐, 처분의 근거법규, 즉 하천법에서 정한 절차가 아니어서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음

다. 사정판결

■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 취소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사정판결이 가능함(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의 근거

- 대부분 공정이 90% 이상 완료,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
- 일부 처분의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하더라도 일부 취소만 가능한바, 이는 전체 사업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
- 광범위한 토지 수용절차 완료로 취소 시 엄청난 혼란 예상

■ 관계법령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3. 민주통합당 비판과 답변

가. 비판 요지

- 1) 4대강 사업의 정당성, 필요성, 효과에 대한 정부 주장을 모두 수용
- 2)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 관련 법원 판결이 상반된 것은 문제
- 3) 위법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명하지 않은 ‘사정판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유사(부산고법 판결)
- 4) 사정판결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상대방의 손해,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에 대한 조사 과정(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을 생략하여 위법(부산고법 판결)

나. 답변

1) 정부 측 주장 전부 수용

- 4대강 사업에 대한 각종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판단 부분에서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수변지역 개발 및 수생태계 복원, 레저공간 활용에 관한 정부 측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함
- 이는 양측에서 제출된 서로 상반되는 증거를 모두 조사하여 정부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내린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므로, 상소심에서 충분한 주장과 증거제출을 통해 다투는 것은 별론,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상고심 계속중**이어서 부적절

2) 법원 판결 상반



-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부산고법에서는 국가재정법위반의 점을 인정하여 그로써 처분(하천공사시행계획)이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서울 등 나머지 고법에서는 그것은 예산 편성 자체의 하자가 될 수 있을 뿐 처분의 근거법규, 즉 하천법에서 정한 절차가 아니어서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음
- 법원 판결이 상반된 것은 하천법과 국가재정법의 해석이 다른 데 기인하고 각 법관의 양심에 기초한 판단임
- 법령해석의 통일 기능을 수행할 상고심에서 정리할 부분임¹³⁾

3) 사정판결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부산고법 판결)

- 1994년 검찰은 ‘12.12 사건’에 대해 군사반란을 인정하면서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는 19세기 독일 공법학자 게오르크 엘리네크의 사실적 규범론을 근거로 제시함
- 사정판결은 처분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중요한 공공복리의 실현을 내용으로 할 경우에 공공복리 우선의 관점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감수하면서도 그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률적 내지는 사실적 관계를 존속하기 위한 제도로 공익추구의 행정 목적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인정된 것
- 국회에서 제정된 행정소송법 제28조를 근거로 한 사정판결을 19세기 독일의 구식 이론에 기초한 법언과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률의

13) 재정법은 국가 내부의 규율(내부법)이므로, 이에 위반하여도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법률이 그 재정법위반 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견해와 내부법과 외부법의 구별은 국가 내부 영역을 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보았던 입헌군주정 시대 불침투성 이론의 잔재로서 오늘날에는 진부한 것이 되었고 단지 누가 개별 법규의 수범자인가와 관련하여 형식적 의미를 가질 뿐임이므로, 법질서가 행위주체에 대하여 효용성을 의무지우는 한 이에 상응하는 행정활동의 법적 제한이 발생하고, 이러한 법적 제한은 내부법 영역뿐만 아니라 외부법 영역에서도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가 대립

⇒ 가사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형량하자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수 있을 것



규범력을 무시하는 것

-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 대법원에서 이제까지 한 사정판결도 조선대학교의 같은 권역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설치인가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한 사건 등 손에 꼽을 정도로만 있음

4) 상대방의 손해 등에 대한 조사(부산고법 판결)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사정판결 시에는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 등을 조사하여야 함
- 그러나 조사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행정소송 절차에서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조사에 의하여도 가능하고, 그 조사결과를 명시적으로 판결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판결에는 '보 설치로 인한 피해 예측', '사업시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농민들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재판부가 사정판결에 앞서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쳤음을 추단할 수 있음



4. 4대강 담합 건설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소송 집행정지 사건

가. 사건 개요

- 조달청장¹⁴⁾ 2013. 10. 15. 4대강 사업 턴키 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 업체(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사업 중 3개 공구에서 담합 판정을 받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함
 - 10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인 현대, 삼성물산, 대우, 대림, GS, SK 등 6개사에 대해 15개월 /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포스코, 현대산업개발, 쌍용, 삼성중공업, 한화, 경남, 코오롱, 한진중공업, 삼환 등 9개사에 대해 4개월
- 처분의 근거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2. 8. 31.자 의결과 검찰의 2013. 9. 24.자 공소제기를 근거로 하고 있음(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 건설회사들이 공사에 관한 '지분을 배분 합의' 및 '물량배분 합의'를 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시정명령 등을 의결한 바 있음)

나. 사건 현황

- 2013. 10. 중순에 접수된 사건으로 아직 변론기일 지정되지 않았음
-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한 심문기일 지정 현황 및 결과는 아래와 같음

14) 조달청장에 대한 비판 요지 : 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조치 후 14개월 지나서야 능장 제재, ② 반면 다른 사건의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수사 중에도 4개월 여만에 입찰제한 조치(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중소기업에는 24개월 제한)



순번	재판부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집행정지 경과
1	1부	20130아3259 (2013구합25740)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코오롱글로벌(주) 외 1	주채권자	- 2013. 10. 21. 16:00 -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정지
2	1부	20130아10305 (2013구합60996)		지에스건설(주) 외 1		- 2013. 10. 21. 16:30 -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정지
3	3부	20130아10296 (2013구합60750)		현대산업개발(주)		- 2013. 10. 30. 11:20
4	3부	20130아10309 (2013구합61029)		김○○		- 2013. 10. 30. 11:20
5	4부	20130아10294 (2013구합60712)		(주)한화건설 외 1		- 2013. 10. 22. 15:30
6	4부	20130아10308 (2013구합61012)		쌍용건설(주) 외 1		- 2013. 10. 22. 15:00
7	5부	20130아10299 (2013구합60842)		경남기업(주)		- 2013. 10. 28. 16:00
8	6부	20130아10301 (2013구합60941)		(주)한진중공업 외 1		- 2013. 10. 28. 10:30 -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정지
9	6부	20130아3257 (2013구합25696)		현대건설(주)		- 2013. 10. 28. 10:30 -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정지
10	11부	20130아10291 (2013구합60699)		에스케이건설(주) 외 1		- 2013. 10. 18. 17:40 -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정지
11	11부	20130아10300 (2013구합60958)		삼성물산(주)		- 2013. 10. 25. 10:00 -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정지
12	12부	20130아10293 (2013구합60705)		(주)대우건설 외 1		- 2013. 10. 21. 14:30 -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정지
13	12부	20130아10302 (2013구합60965)		삼한기업(주) 외 1		- 2013. 10. 21. 15:00 -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정지
14	12부	20130아10315 (2013구합61159)		삼성중공업(주)		- 2013. 10. 22. 14:30 -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정지
15	13부	20130아10304 (2013구합60972)		(주)포스코건설 외 1		- 2013. 10. 24. 17:00 -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정지
16	14부	20130아10295 (2013구합60729)		대림산업(주)		- 2013. 10. 25. 14:00

다. 집행정지 법리와 결정문 작성례

- ▣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 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함

■ 그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 여부 :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집행정지결정의 주문과 이유는 통상 다음과 같이 작성함

● 주문 : 피신청인이 2013. 00. 00.에 한 ○○처분은 이 법원 2013구○○○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그 집행(또는 효력, 절차의 속행)을 정지한다.

● 이유 :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 관계규정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II. 남경필 의원, 홍준표 도지사 명예훼손 사건

1. 개요

-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의원이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액이 적은 예로 든 남경필 의원, 홍준표 도지사 명예훼손 사건에 관해 보고함

2. 사건 및 진행경과

가. 남경필 의원 사건

■ 서울중앙지법 2010가단○○○○

- 남경필 의원 부부가 이○○ 공직윤리지원관 및 경찰관 3명을 상대로, 피고들이 원고 부부를 불법사찰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합계 1억 원(원고별 5,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청구

■ 진행

- 2010. 8. 24. 접수
- 2011. 10. 26. 제1회 변론준비기일
- 2012. 4. 26. 제1회 변론기일
- 2013. 7. 18. 변론종결
- 2013. 8. 22. 판결선고

■ 판결요지

- 불법내사에 따른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인정
-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 피고들의 불법사찰 보고서 작성과 명예훼손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정
- 사생활 침해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의 배상금 인정



▣ 항소

- 판결 후 쌍방 항소 ⇒ 현재 서울중앙지법 2013나○○○○ 계속 중(제6 민사부, 재판장 이○○ 부장판사)

나. 홍준표 도지사 사건

▣ 서울고법 2010나○○○○

- 홍준표 도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인터넷 일간지인 ‘투데이코리아’ 운영회사와 기사를 상대로, 피고들이 허위보도(태권도협회에 원고의 지지를 강요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억 원 지급청구

▣ 진행

- 2010. 7. 12. 제1심 접수(서울남부 2010가합○○○○)
- 2010. 10. 5. 제1심판결선고
 - 무변론 판결
 - 배상액은 5,000만 원만 인정
- 2010. 10. 14. 피고들 항소
- 2010. 10. 27. 항소심 접수(서울고법 2010나○○○○)
- 2011. 11. 25. 변론종결
- 2011. 12. 30. 항소심판결선고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
 - 보도경위, 명예훼손 정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3,000만 원 위자료 인정
- 2012. 1. 17. 피고들 상고
- 2012. 4. 12. 상고기각(심리불속행)



Ⅲ. 밀양 송전탑 관련 사건 현황

1. 가처분사건

▣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 진행경과

- 창원지법 밀양지원 2013카합64
- 2013. 8. 12. 한국전력공사에서 이○○ 외 24명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
- 2013. 9. 17. 제1회 심문기일
- 2013. 9. 30. 제2회 심문기일
- 2013. 10. 7. 제3회 심문기일(채무자들 대리인 박○ 변호사 사임)
- 2013. 10. 8. 가처분 일부 인용(간접강제신청 부분은 기각)

▣ 결정 요지

- 채권자는 송전철탑 부지 소유자 겸 부지진입로 일시 사용권자 ⇒ 공사 방해행위 금지청구권 소명됨
- 송전선로 공사의 공익성(국가의 전력수급계획 등), 채무자들의 공사방해 정도 및 태양에 비추어 본 장래 방해개연성 ⇒ 보전의 필요성 소명됨
- 간접강제 결정 필요성에 관한 소명 부족 ⇒ 일부 기각
- 담보 5,000만 원 제공결정

2. 구속영장

가. 발부

1) 이○○(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 죄명 :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 범죄사실

- 송전탑 집회 중 헬기 운송을 위해 자재를 적치한 야적장의 펜스 5장을 뜯고 들어가서(재물손괴, 주거침입) 야적장 내에서 5분간 업무방해

■ 진행경과

- 2013. 10. 3. 현행범 체포
- 2013. 10. 7. 구속영장 발부
- 2013. 10. 25. 구속적부심 인용,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 보증금 2,000만원(보험증권 가능), 주거·여행·출국 제한조건 추가
 - 수사가 마무리된 점, 피의자 신분 등에 비추어 도망 염려 없는 점 등 고려

2) 박○○(송전탑 반대주민)

■ 죄명 : 특수공집방치상

■ 범죄사실

-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트랙터를 운전하여 의무경찰대원에게 돌진·충격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

■ 진행경과

- 2013. 10. 17. 현행범 체포
- 2013. 10. 18. 구속영장 발부
 - 범죄사실 부인
- 2013. 10. 26. 구속적부심 기각
 -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고려

나. 기각



1) 김○○(송전탑 반대 동화전마을 대책위원장)

▣ 범죄사실

- 송탑 찬성 주민들 협박, 송전탑 자재 천막 방화, 송전탑 공사방해

▣ 기각사유

- 주거 일정하고, 상당한 증거 수집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으며, 향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최○, 홍○○, 이○○(민노총 대구 수석부본부장 등 외부인사)

▣ 범죄사실

- 송전탑 집회 중 어깨로 전경의 방패를 쳐서 넘어뜨려 찰과상을 가하거나, 경찰에게 욕설, 손으로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 기각사유

- 주거 일정하고 현재까지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밀양 송전탑 사건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공판

가. 밀양지원 2012고단418 폭행, 업무방해,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 피고인 : 김○○ 등 15명

▣ 범죄사실

- 송전탑건설공사 방해, 시청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방해 및 송전탑 찬성주민들 폭행 등



■ **진행경과**

- 2012. 9. 27. 피고인 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명의 피고인을 병합하여 재판진행
-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계속적으로 병합사건이 들어와 재판 지연

나. 밀양지원 2013고단514 특수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배○○**

■ **범죄사실**

- 송전탑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 **진행경과**

- 2013. 9. 27. 기소되어 2013. 10. 17. 제1회 공판기일 진행



IV. 대구고법 인혁당 사건 관련

1. 개요

- ▣ 대구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서기호 의원이 사건처리 지연이유를 질의한 인혁당 사건 처리경과에 대해 보고함

2. 사건 및 진행경과

▣ 대구고법 2011나4033

- 인혁당 피해자 라○○의 처가 쪽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 1심에서 피해자의 장모에게 1억 원, 처의 형제자매 등에게 2,000만 원 인정(대구지법 2010가합13217)

▣ 진행

- 2011. 6. 7. 1심 판결
- 2011. 6. 27. 1심 판결에 대해 피고(국가) 항소
- 2011. 7. 11. 항소심 접수
- 2012. 3. 23. 기일추정(관련사건 결과 보기 위해)
 - 국가의 소멸시효남용항변 행사요건 관련
 - 2013. 5.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관련쟁점 정리됨
- 2013. 9. 16. 기일지정
- 2013. 10. 8. 변론종결
- 2013. 11. 12. 판결선고기일(예정)



【사법지원실-형사】

I. 명예훼손 유무죄 ‘복불복 판결’ (○○○ 부장 항소2부)

1) 항소2부 명예훼손 사건 처리내역 요약

순번	결론변경	사건번호	선고일	1심사건	판단		
					1심	2심	3심
1		사건번호 생략	2013. 2. 8.	사건번호 생략	무죄	항소기각	상고기각
2	1	사건번호 생략	2013. 3. 29.	사건번호 생략	유죄	무죄	상고기각
3		사건번호 생략	2013. 4. 19.	사건번호 생략	무죄	항소기각	(2심확정)
4	2	사건번호 생략	2013. 4. 24.	사건번호 생략	유죄	무죄	상고기각
5	3	사건번호 생략	2013. 7. 10.	사건번호 생략	유죄	일부무죄	사건번호 생략
6	4	사건번호 생략	2013. 7. 19.	사건번호 생략	유죄	무죄	사건번호 생략
7	5	사건번호 생략	2013. 7. 26.	사건번호 생략	유죄	무죄	상고기각
8	6	사건번호 생략	2013. 7. 26.	사건번호 생략	유죄	무죄	사건번호 생략
9	7	사건번호 생략	2013. 8. 14.	사건번호 생략	유죄	무죄	사건번호 생략
10		사건번호 생략	2013. 9. 6.	사건번호 생략	무죄	무죄 (공소변경)	사건번호 생략
11	8	사건번호 생략	2013. 9. 27.	사건번호 생략	유죄	무죄	사건번호 생략
12		사건번호 생략	2013. 4. 24.	사건번호 생략	유죄	항소기각	상고기각
13		사건번호 생략	2013. 8. 21.	사건번호 생략	유죄	일부유죄 (사실축소)	(2심확정)



2) 항소2부 처리내용 검토

- 유죄 → 무죄 변경 8건 (확정 3건, 상고심 진행 중 5건)
- 무죄 → 무죄 유지 3건 (확정 2건, 상고심 진행 중 1건)
- 유죄 → 유죄 유지 2건 (확정 2건)
- 무죄사건 총 11건 중 **확정 5건**, 상고심 진행 중 6건
 - 확정 5건 : 상고기각 4건, 2심판결 확정 1건
 - 상급심 파기사례 1건도 없음

3) 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다양한 사항에 관하여 판례 확립, 다만 실제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 법리적 판단 필요)

-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규정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적시할 당시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대법원 2011도1147)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것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06도2074 판결 등)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교회'(대법원 88도899), '노동조합'(대법원 92도3160), '국악협회'(대법원 97도88), '택시운송조합'(대법원 97도15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법원 2000다50213), '재건축 조합'(대법원 2006다15922) 등 국가나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또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부



수적으로 다른 개인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대법원 2006도2074 판결 등)

-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함(2011도1147 등).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2012도10392 등)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설령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음(2006도2074 등)



II. 발레오노조 금속노조 탈퇴 사건 소송 경과

1. 소송의 경과

가. 당사자

1) 원고 : 박○○(금속노조 위원장), 한○○(경주지부장), 정○○(발레오만도지회장) 등

2) 피고

- 전국금속노조 : 금속산업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 규모 산업별 노조
- 발레오만도지회 :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근로자로 구성된 금속노조 경주지부 지회
- 발레오전장노조 : 발레오만도지회에서의 조직변경결의를 통하여 설립된 노조

나. 청구의 요지

-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총회에서 한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 무효 확인(이하 '조직변경결의 무효확인 청구부분')
- 발레오전장노조 규약 제정 결의, 임원선출결의 각 무효 확인(이하 '규약제정 등 결의')

다. 법원의 판결

1) 제1심 : 서울중앙지법 2011. 7. 26. 선고 2010가합124798 판결(재판장 : 이○○, 주심 : 윤○○)

- 원고들 승소

2) 항소심 : 서울고법 2012. 9. 21. 선고 2011나79540 판결(재판장 : 김



○○, 주심 : 강○○)

▣ 원고들 승소(일부 확인의 이익 없어 각하)

3) 상고심 : 대법원 2012다96120(2부 아) - 2012. 10. 26. 접수

2. 판단 요지

가. 조직변경결의 무효확인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16조는 조직변경의 주체가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
- 노동조합 존속 중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1734 판결¹⁵⁾)
-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노동조합법에서 금지(2011. 6. 30.까지)¹⁶⁾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음(대

15)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 고려

16) 노동조합법 부칙(2010. 1. 1.)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 기업별 단위노조 해당
않으면 조직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새로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면 된다
는 취지로 보임

■ 피고 발레오만도지회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발레오만도지회는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발레오전장노조로 조
직형태를 변경한다는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
자가 있으므로, 무효

■ 발레오만도지회의 연원이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조직형태 변경결의
를 통하여 피고 금속노조의 지회가 되었으므로, 형평의 원칙상 역으
로 다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

- ① 발레오만도지회는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② 조합원들의 집단탈퇴 또는 개별적인 탈퇴의 총합 중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 금속노조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에 위배됨

나. 규약제정 등 결의

■ 조직변경결의 무효 ⇨ 규약제정결의 및 임원선출결의 무효

3. 언론보도 요지와 검토

가. 언론보도 요지

-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으니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현실을 모르는 얘기”
- 박○○ 고대 법전문 교수 : 법원이 노동 현실을 무시한 채 금속노조
규정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하는 바람에 산별 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전환하는 길 사실상 봉쇄함

나. 검토

- 별개의 신설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게 되면 종전 지부의 재산관계(조합비 등 재산권)와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복수노조에서 신설 기업별 노조가 과반수 노조면 '교섭대표 노조'가 되므로 문제 없는데, 현재 발레오노조는 다수 노조이므로, 종전 지부의 재산관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임
- 발레오만도지회가 금속노조에 임의로 가입하였으므로, 현행 판례상 가입한 금속노조 규정에 따라 금속노조 총회 결의 없이는 탈퇴 불가
⇒ 형평의 원칙과는 무관(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정한 자치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에 반하는 노동조합 내의 관행 등은 무효임)
-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음



Ⅲ. 북부지법 친고죄 실수 유죄 실형선고 사건(○○○ 부장)

가. 재판의 경위 및 당부

1) 제1심 판결

▣ 서울북부지법 2013고합○○ (재판장 ○○○, 주심 ○○○)

- 2013. 2. 8. 구속기소 [특가범위반, 성폭범위반]
- 2013. 4. 2. 변론종결
- 2013. 4. 2. 피해자 고소취소
- 2013. 4. 5. 특가범 개정(타범개정)
- 2013. 4. 19. 판결선고

▣ 징역 3년, 치료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5년

- 특가범위반 및 성폭범위반 전부 유죄선고 (경합범)
- 양형의 이유에서 ‘처벌불원’ 명시

▣ 피고인 항소

- 항소이유 : 범리오해 (특가범 삭제, 친고죄)

2) 항소심 판결

▣ 서울고등 2013노○○○ (재판장 ○○○, 대등재판부 가 주심 사건)

- 2013. 6. 5. 1회 공판기일 보석결정
- 2013. 6. 11. 공소장변경(특가범 삭제, 형법상 간음유인)
- 2013. 7. 5. 판결선고

▣ 파기자판, 전부 공소기각

▣ 2013. 7. 13. 확정



3) 1심 판결에 대한 판단

▣ 간음목적 약취유인 부분

- 1심 판결 선고 전 특가법 삭제됨 (기관력 표준시는 판결선고시)
- 따라서 형법상 간음유인죄만 인정가능
- 친고죄이므로 공소기각이 타당

▣ 성폭법상 위계에 의한 추행 부분

- 원래 친고죄였음
- 2012. 12. 18. 전부개정(2013. 6. 19. 시행)시 친고죄 폐지되었으나, 2013. 6. 19. 이후 범행에만 적용됨(부칙)
 - ▣ 더군다나 이 사건 1심 판결시인 2013. 4. 19.에는 아직 전부개정법률 시행되지도 않음

▣ 1심 판결의 문제점

- 법률이 변경되어 삭제된 특가법 부분은 삭제사실을 모르고 판결선고
- 법률이 변경된 성폭법 부분은, 아직 개정법률 시행되기도 전이었는데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친고죄를 간과하고 판결선고
- 양쪽 측면에서 다 실수임

나. 민·형사상 및 인사상 불이익 여부

1) 형사책임

▣ 형법상 규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대법원 판례**

-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1739 판결)
-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1739 판결)

■ 재판 과정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한 실수가 있더라도, 고의적으로 불법한 의도로서 국가기능을 저해하거나 남용하려 한 행위가 아닌 이상, 그 권한 행사 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권한의 외부적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니므로(재판과 심급제도라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 형사처벌까지는 불가함

2) 민사책임

■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황

- 서울북부지법 2013가소○○○○○ (피고 대한민국, 소가 1,000만원)



- 2013. 9. 10. 접수, 기일 미지정

▣ 대법원 판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인정한 사례

- 헌법소원 청구기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200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 부정한 사례

- 임의경매 절차에서 법관의 오인으로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어 확정된 경우, 법관에게 위법·부당한 목적이나 직무수행상 준수할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부정한 사례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임

3) 인사상 문제

▣ 개개 재판 결과를 직접 인사에 반영할 경우에는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인사권자를 과도하게 의식하여 위축되거나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문제 발생 가능

▣ 다만, 법관의 재판이 법률 적용 잘못으로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경우에는 파기율과 파기사유 등이 근무성적평정에 고려되므로 근무성적평정을 통하여 인사에 반영될 여지

법원조직법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다. 유사실수 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조치내용

- 2013. 3. 형사재판장 연수 실시
- 2013. 3. 성폭력 전담재판부 법관연수 실시
- 2013. 4. 연수자료 추가 제작.배포
 - 법관연수 미참가 법관 등 모든 담당법관에게 연수자료 추가배포
- 2013. 5. 형사법연구회, 성범죄커뮤니티 등에 법령변동으로 인한 실수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 및 메일링서비스
 - 주요 법률개정 내용 안내
 - 최근의 성폭력 관련 법률개정내용 안내
- 2013. 5. 형사법연구회 및 성범죄커뮤니티에 최신 강의자료 「성범죄 사건의 심리에 관한 유의사항」(천○○ 부장판사) 게시 및 메일링서비스
- 2013. 8. 성범죄 비교법령집, 연혁법령집 제작.배포
- **현재 성폭력범죄 재판 실무편람 발간작업 중**
 - 2013년내 발간 목표
 - 현재 원고초안 작성완료, 2차독회 진행 중



IV. 형사재판(1회 공판기일까지의) 소요기간 편차 관련

가. 형사사건에서의 통계 일반론과 관련된 부분

- 형사사건은 상대적으로 재판부 수가 민사사건의 경우보다 적어 규모가 작은 법원의 경우 통계수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제주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 형사사건에서는 구속과 불구속 사건에 따라 구분되는 특성이 있음
 - 구속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편차가 적음
 - 구속사건 및 선거사건 등이 우선 처리될 필요에 따라 해당 재판부의 일반 불구속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
 - 재판부 수가 적은 법원의 경우 위와 같은 요소가 극단적으로 표출

나. 2012년의 특수성과 관련된 부분

- 한편, 2012년에는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합의부 관할) 사건이 폭증하여, 특히 규모가 작은 대구고등법원 등의 통계수치가 현저히 나빠짐
- 2012년 고등법원 통계
 - 접수건수 : 2011년보다 20.8% 증가(10,042건 → 12,128건)
 - 5개 고등법원 모두 접수건수 증가하였으나, 특히 대구고등법원 41.5%(829건 → 1,173건, 344건) 증가
 - 2012. 4. 19. 총선이 실시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대구고등법원은 244건 증가하였음
 - 제1회 공판기일까지 평균 소요일수
 - 구속사건 : 2011년보다 6.5일 증가(39.4일 → 45.9일)
 - 불구속사건 : 2011년보다 37.6일 증가(55.6일 → 93.2일)



- 대구고등법원의 경우 제1회 공판기일까지 구속사건은 63.7일, 불구속사건은 143.8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소요됨 (2011년 대비 구속사건 21일, 불구속사건 60일 증가)
- 2011년 대비 접수건수가 20.8% 증가함에 따라(특히 신속처리가 요구되는 공직선거법 사건¹⁷⁾이 폭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판부 수가 많지 않은 형사재판부의 경우 5개 고등법원 모두 불구속사건의 처리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임(형사재판부가 1개인 대구의 경우 특히 통계수치가 악화된 것으로 보임)

다. 전반적인 추이

- 전반적으로는, 2012년의 고등법원을 제외하면, 1심 합의와 지방 항소사건의 경우 1회 공판기일까지의 소요기간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다만, 1심 단독은 소폭 상승)

라. 종합답변 및 대책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법관대면권 보장과 실질적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까지의 소요기간이 감소되어야 할 필요성은 공감함
- 지적내용에 대하여

김 의원에 따르면 1심 형사합의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부터 첫 공판까지 평균 34.3일 소요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3.1일, 대구지법은 51.1일 만에 각각 첫 공판을 여는 등 편차가 컸다.

- 1심 합의의 경우, 비록 상대적으로 편차가 있기는 하나, 2011년과 비교하여 불구속 사건은 11.6일 감소하는 등 1회 공판기일까지의 소요기간이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2011년과 비교하여 1회 공판기일까지의 소요기간이 구속사건은 0.2일 증가, 불구속 사건은 11.6일 감소

17) 공직선거법상 처리기간 1심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2심 및 3심 전심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 구속사건 : 2011년 25.0일 → 2012년 25.2일
- 불구속사건 : 2011년 49.7일 → 2012년 38.1일

형사단독사건도 비슷했다. 평균 37.9일 만에 첫 공판을 열었고 제주지법(23.4일)과 창원지법(79.0일) 등은 세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났다.

- 1심 단독의 경우, 비록 전체사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불구속 사건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법원 사이에 큰 편차가 있기는 하나,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편차가 없음
- 구속사건 : 최단 15.0일(인천), 평균 19.4일, 최장 23.5일(대전)
- 불구속사건 : 최단 24.1일(제주), 평균 40.3일, 최장 87.0일(창원)
- 전체사건 : 최단 23.4일(제주), 평균 37.9일, 최장 79.0일(창원)

고등법원이 맡는 2심은 사건 접수부터 첫 공판까지 평균 67.6일이 걸렸고 부산고법(37.6일)과 대구고법(104.1일)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 고등법원의 경우, 2012년 공직선거법 사건의 증가분으로 인해 대구고등법원 등 형사재판부가 1개에 불과한 법원의 경우 거의 모든 지표가 통계상으로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법원행정처는 조기에 1회 공판기일이 지정될 수 있도록 매년 형사재판장 연수 등을 통해 그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법원별로 적정한 인원배치와 형사재판부 설치를 통해 1회 공판기일까지의 소요기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처리기간의 편차를 줄여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사법지원실-가사/소년】

I. 가사·소년 전문법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 가정법원의 전국 확대 설치와 함께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 꾸준히 증원(2005년 7명 ⇨ 2013년 25명)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문법관 수	7	11	13	14	17	20	24	24	25

- 전문법관의 서울 편재 현상 극복, 전문법관의 전문성 강화가 과제

가정법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합계
전문법관	17	2	2	3	1	25

- 민사소액사건 분야의 전담법관제도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사사건 분야에도 확대 검토(신규 임용 법조경력자의 지방 소재 법원 전담법관 임용 방안). 전문법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 기회 확대 검토



II. 후견적 · 복지적 기능의 지역적 편차 해소 방안

- 지방법원에서도 가정법원과 마찬가지로 후견적 프로그램 시행

- 자녀양육안내제도, 전문가상담제도: 전국 법원 실시
- 화해권고제도: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실시
- 심리상담조사제도: 인천, 수원, 춘천 실시
- 통고제도: 전국 법원 실시
- 청소년참여법정: 의정부, 수원, 춘천, 청주 실시

- 가정법원이 이룩한 성과들은 각종 회의, 세미나 통해 전국적으로 공유
- 본 · 지원 간 교류(후견적 · 복지적 프로그램의 공동 실시 등) 통해 후견적 · 복지적 기능 편차 감소
- 전국적으로 균질한 후견적 · 복지적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

“통상임금” 전합 선고 후 각계 동향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3. 12. 19.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통상임금” 전합 선고 후 각계 동향

2013. 12. 19.

공보관실

1. 개요

- 2013. 12. 18. 통상임금 전합 선고 후 재계는 우려를 표현하는 중 차액을 소급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다행스러움을 표시
- 노동계는 선고 직후에는 판결을 대체로 환영하면서, 정기상여금 이외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정도였으나, 선고 당일 18시 이후부터 신의칙 적용 부분과 각종 수당의 불인정 부분에 대해 비판의 정도가 강해짐
- 정·관계 동향은, 새누리당의 경우 판결을 존중하나 산업계 부담과 혼란을 우려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의 경우 큰 틀에서는 존중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신의칙 제한 언급 부분에 대해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는 취지의 비판성 논조를 취함
- 언론계 동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의 사실보도가 주류이고, 이번 판결의 평가에 관하여는 노동계 측 입장을 반영했다고 해석하는 언론사가 다수임. 다만, 한국경제는 이번 판결이 재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함
- SNS 등 온라인 동향은 선고직후에는 이번 판결이 노동계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하는 언급들이 많았으나, 19일 새벽부터 노동계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취지의 비판성 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2. 재계의 반응

가. 대체적인 반응의 요지



- ▣ 재계는 대체로 이번 판결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우려를 표현함
- ▣ 다만, 신의칙에 의한 소급청구가 제한되는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해 다행스러움을 표시하기도 함

나. 단체별 반응

- ▣ 한국경영자총협회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그게 깨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
 - 25년간 행정해석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판결이기 때문에 우려될 만하다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이번 판결은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것
- ▣ 중소기업중앙회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
 - 정부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법률체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
 -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면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응답
- ▣ 한국경제연구원
 - 월급쟁이는 한달 기준으로 약속된 근로에 대해 지급한 대가가 통상임금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정기성과 고정성에 방점을 둔 게 아쉽다
 - 투자가 위축될 것에 관한 우려를 표명
-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기업 비용부담을 토로하는 논평 준비 중
- ▣ 자동차업계, 증권업계
 - 내년 인건비를 다시 계산할 수 밖에 없다.
 - 기업의 인건비 상승에 부담
 - 국내 증시 부담 커질 것
 - GM 본사의 향후 행보가 문제이고, 한국 철수설이 불거질까 우려된다는 입장
- ▣ 제조업계, 식품업계
 - 제조업계는 인건비 부담이 많은 제조업계가 가장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
 - 식품업계는 이번 판결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평가함

3. 노동계

- ▣ 민주노총 : 선고직후에는 대체로 환영, 신의칙 적용 여지를 둔 것은 불만, 19일부터 비판성 논조 강화됨
 - 18일
 - 당연한 판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
 -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단순한 임금계산 문제가 아니라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노동을 극복하는 문제
 -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 포괄역산제, 변칙적 연봉제 등 또 다른 왜곡된 임금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 다만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파기환송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 입법취지에 반하는 매우 부당한 판결

- 19일
 - 정기상여금 인정한 것 환영, 소급 적용 안되는 것은 이해 안돼
 - 복리후생비 모두 인정 안되는 것은 아쉽다
 - 개운치 않은 판결로 내년 임단협도 상당한 분쟁이 예상돼
- ▣ 한국노총 : 선고 직후에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으나, 18일 18시 이후부터 판결에 대한 분노감을 표명하면서 강한 비판성 논조를 취함
- 18일 18시 이전
 - 이번 판결 환영한다. 그러나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
 - 과거 95년 전합 이전의 임금 이분설로 되돌아 간 것
 - 김장비,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 있었다
 - 이것이 제외된 것은 법원이 부담되고,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 18일 18시 이후
 - 이번 판결은 모든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는 1995년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후퇴한 것
 -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정치적 판결
 - 사법부는 경제단체 부속기관

4. 정 · 관계

- ▣ 새누리당
 - 새누리당은 우려를 표현하거나, 통상임금 재조정 문제를 임금체제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등과 연계해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언론보도, 이번 판결은 별다른 법 개정이 필요 없을 만큼 대법원 판



단이 충실했다는 언론보도 혼재하다 18일 18시 이후부터는 이번 판결로 노사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는 논조를 취함

● 대변인실

- 판결을 존중, 통상임금의 소급적용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기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한 탄력적인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평가

● 김성태 의원(18일 오후 6시 전)

- 산업계 부담 가중 우려, 산업 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 통상임금은 노사가 합의해야 할 부분

● 이종훈 의원(18일 오후 6시 전)

- 이번 판결은 노사 자율 영역을 상당부분 인정했지만 한편으론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을 남겼다.
-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

● 이완영 의원(18일 오후 6시 전)

- 대법원이 매우 충실하게 검토했다. 입법 개정이 필요없다.
- 소급해서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분규를 크게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논평

● 심재철 의원

- 통상임금 논란 일단락. 재계 부담 우려. 새출발 기회

● 최경환 원내대표

- 이번 판결이 국회와 노사관계에 많은 불씨를 남겼다

▣ 야권

- 당연한 결과라는 언론보도와, 대기업 편들기(신의칙 위반을 들어)라고 강력 반발했다는 언론보도 혼재하다가, 19일부터는 큰 틀에서는 판결을 존중하나, 추가임금 청구를 경영상 어려움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노사 관행 및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는 비판 취지로 입장 변경
- 통상임금에 미포함된 복리후생비에 대해선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 홍영표 의원

- 대법원 판결은 논란 소지 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수당, 격려금, 인센티브, 복리후생비 일부(비고정) 등에 대해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하겠다.
- 판결에 모든 복리후생이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 입법 논의과정에서 각 사안별로 다양한 사례를 종합할 계획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 노사 간 의견을 균형있게 조율하고, 기업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노사가 현명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관계 장관 회의

- 18일 선고 후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 후속 조치 추진”, “특히 중소기업 지원 방안 논의”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에 특히 많은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5. 언론사 동향

가. 개요

- ▣ 각 언론사들은 대체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은 포함”을 헤드라인으로 하고, 다소는 중립적인 사실보도가 주류임
- ▣ 이번 판결의 의미에 관하여는, 대체로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었다거나 노동계와 기업의 이익을 절충했다는 측면에서 평가함. 한겨레신문의 경우, 신의칙을 적용한 부분에 관하여 ‘궁색한 절충’이라거나 ‘대법원이 박 대통령의 민원을 들어준 꼴’이라는 취지의 비판성 논조를 취함



-
- 단, 한국경제는 “통상임금 관련 노사합의가 우선”, “재계 손들어줘” 라는 헤드라인으로 언론보도를 하고, 신의칙 적용의 여지를 열어둔 점을 부각해 기사를 쓰면서 이번 판결을 재계에 유리한 판결로 평가함

나. 주요 언론의 보도요지

■ 조선일보

- 헤드라인 :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 방향 : 판결 내용 대체로 중립 보도

■ 동아일보

- 헤드라인 : 통상임금 확대와 신의칙에 의한 소급적용 제한의 절충 판결
- 방향 : 판결 내용에 관해 대체로 중립 보도 + 신의칙 적용 기준의 애매성(회사가 감당 못할 정도인 것 관련)으로 노사갈등 새불씨가 생겼다.

■ 중앙일보

- 헤드라인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실질급여 얼마나 뛰나
- 방향 : 판결 내용에 관해 대체로 중립 보도 + 대법 판결 예고되었는데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고용부 비판 논조

■ 한국일보

- 헤드라인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 방향 : 판결 내용에 관해 대체로 중립보도 + 각계의 입장을 정리하여 기사화

■ 경향신문

- 헤드라인 : 통상임금 확대, 시간외수당 오른다
- 방향 : 대체로 판결 내용에 관한 중립보도



■ 한겨레신문

- 헤드라인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확정, 소급적용은 제한
- 방향 : 해묵은 논란을 정리했지만, 기업부담 내세워 궁색한 절충을 한 판결이라는 비판성 논조, 박 대통령의 민원을 대법원이 들어준 것이라는 취지 비판기사

■ 서울신문

- 헤드라인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 방향 : 대체로 판결 내용에 관한 중립보도 + 각 계 입장 위주로 보도

■ 매일경제

- 헤드라인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기업 투자·고용계획 다시 짚판
- 방향 : 재계측 반응을 주요하게 다룸

■ 한국경제

- 헤드라인 : 상여금도 통상임금, 소급 청구는 제한, 노동계에 명분 주고, 재계엔 실리 안겨준 판결
- 방향 : 통상임금의 범위는 확대하면서도, 추가임금 소급청구를 제한함으로써 노사합의와 기업경영 부담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취지 + 3년치 소급분 핵폭탄은 피했지만 임금상승은 불가피 + 추가임금 청구 불허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노동계의 비판반응을 다룸

■ 서울경제

- 헤드라인 :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임금체계 개편 거센 후폭풍
- 방향 : 재계와 노동계, 정부측 반응과 입장을 다루는 기사가 대부분

6. 온라인 동향

■ 2013. 12. 12.(목) ~ 2013. 12. 18.(수) 까지의 동향

■ 일주일간 "통상임금" 으로 총 747건의 멘션



▣ 2013. 12. 18. 기준 총 591건의 멘션 (16:30 기준)



- ▣ 연관 이슈 검색어는 "대법원, 판결, 임금체계" 등이 있음
- ▣ "통상임금"에 대해 큰 멘션량이 없다가 18일 급증하였음
- ▣ 동향은 18일 선고 직후 "언론사의 사실 보도" 및 "노동계 승리"라는 취지의 트윗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일 새벽부터 "이번 판결은 노동계 승리가 아니다" 라는 취지의 트윗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음
 - En Garde! / 판결문 요약하자면, 1. 그 동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안 넣은 건 잘못임->앞으로는 그렇게 해라(노동계 WIN) 2. 하지만, 지난 3년 간 주지 않은 통상임금은 줄 필요 없어(사용자 WIN : 수 조의 부담을 덜어냄) twitter 16시간전112
 - 김○○ / 오늘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보니, 정치적 판결을 위해 얼마나 머털 굴렀을까 싶다. 밀린 통상임금은 안줘도 된다, 거기다 통상적으로 지급해오던 김장보너스나 휴가비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으로써 통상임금의 체계를 무너뜨렸다. 그 좋은머리들을 좋은데 쓸순 없었나 twitter 12시간전108
 - En Garde! /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가를 정정합니다. 노동계는 패배했습니다. 지나 3년간 지급되지 않았던 통상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범위는 올바르게 바로잡았지만, 그건 미래의 일이고... twitter 16시간전90
 - 한겨레 / [속보] 대법원이 "통상임금서 상여금을 제외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twitter 19시간전67



-
- 오마이뉴스 /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노동계 손 들어준 대법원
<http://t.co/Y7hdVSMYhY> twitter 19시간전48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전주지법 11. 25. 선고)

2015. 11. 25.

사법정책실

1. 개요

가. 사건개요(2015구합407)

1) 당사자 및 재판부

- 원고 : 이○○(통진당 비례대표 전라북도회의의원)
- 피고 : 1. 전라북도회의의장 2. 전라북도
- 재판부 :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 방○○ 부장판사, 주심 : 임○○ 판사)

2) 사실관계

- 원고는 통진당 추천받아 비례대표 전라북도회의의원으로 당선
- 현재는 2014. 12. 19. 통진당 해산결정 및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
- 중앙선관위 2014. 12. 22. '현재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현재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퇴직된다고 전라북도의회 등에 통보
- 피고 전라북도회의의장은 2014. 12. 22. 원고에게 '공선법 제19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원직에서 퇴직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취지로 통보

■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나. 청구취지

1. 피고 전라북도의회이장이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 퇴직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전라북도는 원고가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판결선고 결과

가. 주문

1. 원고의 피고 전라북도의회이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전라북도는 원고가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 이유의 요지

1) 취소청구(청구취지 1항)

- 2014. 12. 22.자 퇴직 통보는 피고 전라북도의회이장이 원고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의하여 퇴직되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함.

2) 지위확인 청구(청구취지 2항)

- 핵심쟁점 :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해산'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말하는 '해산' 포함되는지 여부
 -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 의원직 유지
 -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 의원직 상실
-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함. 解散은 사전적으로 ① 자진 해체의 의미, ② 본인 의사와 무관한 해산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음. ⇨ 의원직 상실된다는 해석론은 엄격해석과 배치됨



- 공선법 제192조 제4항이 당연퇴직 제외사유로 예시한 '합당해산 또는 제명'은 모두 본인 의사와 무관 ⇨ 법률조항의 취지는 자의로 당적 벗어나는 경우 당연퇴직 처리하겠다는 것임
- 연혁적 관점에서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1992년 제14대 국회에서 철새정치인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헌법재판소 역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음
-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음**
-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선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 이와 같은 해석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피고 전라북도가 원고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됨.

3. 향후 대응

가. 對언론

- 판결 전문 공개 시 보수 언론은 위헌정당해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직위가 상실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주지법 판결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 문화일보 2015. 11. 25.자 석간 ⇨ 전주지법 판결이 현재 결정과 배치된다는 취지로 비판
- 공보스탠스 ⇨ ① 법무부 스스로 지방의원에 대해서 직위 상실 청구하지 않은 점, ②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사이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부각(국회의원 직위 상실에 관한 판단 부분은 보도를 차단해야 함)
- 법무부 역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시킬 근거가 박약하다는 판단 하



에 의원직 상실청구 하지 않음(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의원직 상실청구 함)

- 지방의원은 행정적 성격이 강하므로 정당기속성이 상대적으로 약함

■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 전주지법 간 공보스탠스 공유 완료**

나. 향후 활용

■ **공선법 제192조 제4항의 해석론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뉠 수 있음**

■ **다만,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방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선언한 부분은 권력분립 원칙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재의 월권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함**

- 선결문제로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 국회의원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판단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정반대 취지임

■ **향후 법관을 상대로 한 헌법교육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끝]**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

1. 작성 경위

- 법원행정처 주무 심의관은 2015. 11. 25.(수) 오전 전주지방법원에서 통진당 지방의원 판결 선고된 사실 확인하고 전주지법 공보관에게 판결 초고 요청
- 판결 초고 분석 결과, 서울행정법원 판결(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사건)과 달리 본안 판단을 하였고 이유 설시도 양 판결 간에 일부 저촉된다는 사실을 확인함
- 주무 심의관은 2015. 11. 25. 문화일보 석간 보도(전주지법 판결을 비판하는 취지)를 접하고 개인적으로 전주지법 판결 이유 분석, 서울행정법원 판결과의 차이점, 언론 대응 방향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였음
- 문건 작성 당시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정책실장은 모두 외부 일정으로 출타 중이어서 내부에 보고되지도 않음

2. 유출 경위

- 주무 심의관은 홍보심의관에게 전주지법 판결에 대해서 설명
- 주무 심의관은 향후 기자단 질의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홍보심의관의 설명을 듣고 해당 문건을 송부
- 그 후 전주지법 공보관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에 전주지법 판결에 관한 설명자료 내지 보도자료 제공을 요청
- 홍보심의관은 문건의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위 문건을 전주지법 공보관에게 송부
- 전주지법 공보관 역시 문서의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위 문건을 전주지법 출입기자단에 송부

- 전주지법 공보관은 뒤늦게 해당 문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주무 심의관에게 위 문건이 법원의 공식 입장인지, 기자들에게 배포하여도 되는지 문의(이때까지 주무 심의관에게 해당 문건을 배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음)
- 주무 심의관은 해당 문건이 법원행정처 공식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것에 불과하고, 결재를 얻지도 않은 내용이므로 절대로 기자단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설명

3. 해명 내용 요약

가. 작성 경위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중 “해산”의 해석론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뉠 수 있음
-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방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 권한을 갖는다고 선언한 부분이 적절하다는 견해는 주무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임
 - 주무 심의관은,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의 선언 권한을 부여한 헌법,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견해를 갖게 된 것임
- 주무 심의관이 개인적으로 위 논점에 관하여 검토한 이유는, 전주지법 판결은 지방의원에 관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유에 국회의원에 관한 언급이 있고, 그 직위 상실 여부의 판단권한 귀속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설시가 일부 달라서 검토하게 된 것임

나. 유출 경위

- 주무 심의관은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건을 참고용으로 공보관실에 송부하였고, 공보관실은 전주지법에 위 문건을 전달
- 전주지법은 착오로 위 문건을 기자단에 배포

- 대법관 감축(대안 검토) -

1. 문제제기

- ▣ 고위직 자리늘리기, 대법관 전관예우 유지
- ▣ 국민보다 사법부에 유리한 제도 ⇨ 사법부 희생적 방안 요구

2. 의원 언급

- 의원 언급은 없음
- 이○○, 서○○ 교수 공청회 발표문 ➡ 대법관 수를 9인으로 감축 주장
- 법률신문 3/16자 사설 ➡ 상고법원 설치 시 대법관 축소 제안 필요

3. 대안 검토

1) 감축 규모

- ▣ [1안] 4명 감축 : 대법관 13명 ➡ 9명 (처장 포함, 전합 9명, 소부 4인)
 - 이상적인 원벤치(one-bench) 숫자
- ▣ [2안] 2명 감축 : 대법관 13명 ➡ 11명 (처장 포함, 전합 11명, 소부 5인)
 - 업무 부담 고려, 감축의 상징성 부각으로 대안으로서의 의미 충분함
 - 1,2심은 3인 재판부 ➡ 상고법원은 4인 재판부 ➡ 대법원은 5인 재판부

2) 감축 시기

- ▣ [1안] 상고법원 시행일 이후 시행
 - 시행 직후에는 기존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를 위해 일정 유예기간 필요함
 - 2018년 대법관 6명 임기 만료 및 정권교체기 ➡ 감축 적기
- ① 2018. 1. 1. 시행 ⇨ 現BH 관여도 거의 동일 / 대선 국면 2명 임명절차 실질 주도 난점

- 2018. 3. 1. 기준 현 BH의 관여도는 거의 동일(전합 과반수 이상)

▪ (현행 규정) 9명/13명(=69%) → (감축 적용) 7명/11명(=64%)

● ② 2018. 3. 1. 시행 ⇨ 現BH 반대이유 無 ⇨ 차기 BH 2020. 3.까지 임명 불가로 잠재적 반대 우려

■ [2안] 상고법원 시행일과 동시 시행

● ① 2016. 9. 1. 시행 ⇨ 4명 전부 CJ, BH 권한 제약 ⇨ BH 반대 예상

● ② 2017. 3. 1. 시행 ⇨ CJ 1명, 現BH 3명 제약 ⇨ BH 반대 예상

성명	임기만료	現 BH 임명대상	①상고법원 시행일부터		②시행일 이후부터	
			2016.9.1.	2017.3.1.	2018.1.1.	2018.3.1.
민○○	2015. 9. 16.	○				
이○○	2016. 9. 2.	○	✓			
이○○	2017. 2. 27.	○	✓			
박○○	2017. 6. 1.	○	✓	✓		
2017. 9. 대법원장 취임 / 2017. 12. 대선						
김○○	2018. 1. 2.	○	✓	✓	✓	
박○○	2018. 1. 2.	○		✓	✓	
2018. 2. 차기 BH 취임						
고○○	2018. 8. 12.			✓	✓	✓
김○○	2018. 8. 12.				✓	✓
김○	2018. 8. 12.					✓
김○○	2018. 11. 1.					✓
조○○	2020. 3. 3.	既 임명				
권○○	2020. 9. 11.	既 임명				
박○○	2021. 5. 7.	既 임명				



대한변협 압박 방안 관련

2014. 9. .

기획조정실

1. 검토배경

- 대법원은 그 동안 법조3류의 한 축인 대한변협과의 신뢰·협력 관계의 복원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러나, 대한변협은 2014. 8. 25. 변호사대회에서, 대법원과의 사전협의를 무시하고 대법관 증원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법원의 노력을 무색하게 함
- 대법원도 이제는 화해적 시도와 노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대한변협을 압박하고 제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필요 있음
- 다만,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신에 어긋난다는 양비론적 비판에 직면할 우려 있으므로, 적정하고 실효적인 압박 수단을 검토할 필요 있음

2. 압박 방안 요약

추진 여부	방안
추진 가능	① 변호사 평가제 도입 추진 의사 피력
	②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반대
	③ 대한변협신문 광고 게재 중단
	④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공탁지원금(5억 원) 규모 축소
추진 보류	① 법조 인접 직역 소송대리권 부여에 대한 논의 제기
	② 형사사건 국선전담변호인 비율 대폭 증대 추진 피력
	③ 각종 토론회·간담회 참석 요청 거절
	④ 변협 주관 각종 위원회 참여 철회
	⑤ 변협 주관 각종 변호사연수 법관 출강 지원 중단



㉔ 각종 교류행사 중단

3. 기본 방향

▣ 대한변협의 도 넘은 행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질적 불이익 부여

- 법조 3륜의 한 축에 걸맞지 않는 대한변협의 최근 행동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엄정한 대응 필요
- 대한변협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압박 수단 발굴 및 활용 필요

▣ 다만, 압박 수단의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사법부 위신에 손상을 주거나, 대외적 명분이 없어 역공의 우려가 있는 방안은 부적절
- 국민들이나 제3의 기관의 피해 또는 반발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은 부적절

4. 추진 가능 압박 수단

▣ ① 변호사 평가제 도입 추진 의사 피력

- 개요
 - 재판장이 연중 수시로 변론능력이 매우 뛰어나거나 현저히 부족하여 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변호사에 대하여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 변론 사례, 문제 사례 등을 공표함
- 기대효과
 - 재판권 행사 주체인 법원의 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제도 시행 공표만으로도 변호사들에게 상당한 경각심 초래 ⇨ 대한변협의 태도 변화 기대
 - 아울러, 사법부 내부적으로는 법조일원화에 따른 변호사들의 법관 임용



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자료를 축적하고, 외부적으로는 변호사들의 변론 능력 향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

● 부정적 요소 및 극복 방안

- 대한변협이 변론권 침해 등을 내세우며 반발할 경우, 국민들에게 대한변협과의 이전투구 식 갈등으로 비쳐져 사법부의 품위 손상 우려 ⇨ 평가 제도의 명분(법조 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 필요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등)을 전면에 내세워 극복 시도
- 변호사 직역 전체와의 긴장 국면 조성 우려 ⇨ 부정적 평가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변론능력 등이 우수한 변호사에게는 오히려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강조

● 구체적 추진 방안

- 변호사 평가제 도입 TFT 구성 ⇨ 공표시기, 평가주체, 시기, 대상, 항목, 방법, 평가결과 공개범위 등

■ 2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반대

● 개요

- 최근 대한변협 회장단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에 대하여 대법원 차원에서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함

☑ **대한변협 추진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내용**

① 대법원 상고사건 또는 지방법원 제1심 소액사건의 적극적 당사자(원고)부터 단계적 실시

②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국선대리인 또는 공선대리인 선임

- 현재 대한변협 회장단이 서영교 의원을 통하여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발의 의뢰 중인 상태임

● 기대 효과

- 대법원 추진의 상고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고수시 대한변협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각인 효과

● 부정적 요소 및 극복 방안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소송구조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건의하였다는 지적 가능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무자력 요건 완화를 통한 소송구조 활성화를 전제로 한 논의임, 고등법원 이상의 사건의 범위를 넘어 지방법원 제1심 소액사건까지 필수적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변호사의 권익보호에 가까운 제도임을 강조

■ ③ 대한변협신문 광고 게재 중단

● 개요

- 대법원의 각종 신설 제도 및 법관 임용 계획 등의 홍보 내지 대한변협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대한변협신문에 광고를 게재해왔던 것을 중단함

● 현황

- 2013. 1. ~ 2014. 8.까지의 광고 집행 내역 ⇨ 21건 총 광고료 2,400만 원
 - 전자소송, 성년후견제도 시행, 상임 조정위원 신규위촉계획, 법관 임용계획, 소송구조제도, 국민참여재판, 회생 파산사건 전자소송 시행 등

● 기대 효과

- 대한변협과의 관계 절연 의지를 드러내기에 적합함

● 부정적 요소 및 극복 방안

- 홍보 효과 저감 우려 ⇨ 홍보 효과는 법률신문 게재 등으로 충분, 추가로 대한변협신문에까지 게재할 필요는 없음(특히, 각종 법관 임용계획 공고는 2013년부터 변협 측 요청에 따라 게재되기 시작함)

■ ④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공탁지원금(5억 원) 규모 축소



● 개요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구조사업¹⁾에 대한 2015년도 공탁지원금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축함

● 현황

항	과 목	공탁지원금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률구조 사업(제5호)	합 계	4억	4억	3억	3.5억	5억	5억	5억

● 기대 효과

- 대한변협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모를 감축함으로써 실질적인 타격 가능

● 부정적 요소 및 극복방안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공탁지원금이 다문화가정 외국인, 새터민 등에 대한 법률구조비용으로 활용되는 만큼 지원규모 축소시 역풍 우려 ⇨ ① 이 자율 인하로 인한 공탁출연금 감소라는 명목 강조, ② 대한변협 법률구조 재단 이외의 기관²⁾에 대하여도 유사한 비율로 지원 규모 감축

☑ [참고] 기관별 공탁지원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 원)

지원대상 기관별	지원금액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원행정처	42,182	55,288	39,903	48,360	62,303	74,657	67,456.5
법률구조공단	3,539	5,842	5,000	5,800	8,400	8,400	7,50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0	80	120	150	300	400	400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	20	-	-	20	-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400	400	300	350	500	500	500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	-	300	250	300	300	300

1) 다문화가정 외국인법률구조, 새터민 법률구조, 일반 법률구조 사업으로 나뉨

2)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등



서울국제중재센터	-	-	-	-	-	-	100
합 계	46,221	61,630	45,623	54,910	71,823	40,257	76,256.5

5. 추진 보류 압박 수단

■ ① 형사사건 국선전담변호인 비율 대폭 증대 추진 피력

● 현황

- 현재 국선전담변호사 229명이 전체 형사사건의 40% 사건을 담당하고 있음

● 추진 보류 이유

- 국선전담변호사 증원을 위해서는 공탁지원금 증액이 필수적이나, 공탁출연금 규모 축소 추세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증액이 쉽지 않음

■ ② 법조인접직역 소송대리권 부여에 대한 논의 제기

● 개요

-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법조인접직역 대표 초청 간담회 또는 만찬을 통하여, 법조인접직역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함

● 추진 보류 이유

-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대한변협회장을 제외하고 법조인접직역 대표들과 만남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변협회장에게는 상당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자칫, 법조인접직역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거나, 법원이 법조인접직역 대표들을 카운터파트너로 인정하고, 소송대리권 부여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표시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음

■ ③ 각종 토론회·간담회 참석 요청 거절



- **참석 요청 현황**

- 2013. 1.부터 2014. 8.까지 약 5건 정도 토론자 등 추천 요청 접수됨
 -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방안에 관한 토론회’, ‘소송지휘권에 의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심포지엄’,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과 지적재산권 대리제도’,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

- **추진 보류 이유**

-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할 토론회 등도 있음
- 법무부의 검사가 참석하는 토론회의 경우, 전략적으로 법원행정처에서도 참석할 필요가 있는 토론회가 있을 수 있음

- **4 변협 주관 각종 위원회 참여 철회**

- **위원회 참여 현황**

-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약 2명이 참여 중에 있음(변호사연수규칙 제20조 제4항, ‘헌법재판소·사법연수원·대검찰청에서 추천하는 인사 1인을 포함한다’)

- **추진 보류 이유**

- 변호사연수원이 각 법조지역에 운영위원을 할당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은 변호사연수규칙에 따른 것임
-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회에만 참여하고 있을 뿐이므로, 참여 철회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음

- **5 변협 주관 각종 변호사연수 법관 출강 지원 중단**

- **법관 출강 현황**

- 2013. 1.부터 2014. 8.까지 26차례 법관의 강의가 이루어짐



- 의료소송 관련 판례, 경매 관련 주요 쟁점과 판례정리, 재개발 재건축 관련 최근 주요 판례 등 변호사연수 강의

- 추진 보류 이유

- 변호사연수가 법률전문직으로서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법관의 출강을 중단할 경우, 역풍이 제기될 우려 있음

- 6) 각종 교류행사 중단

- 교류행사 현황

- 대법원-대한변협 간담회, 대한변협 신년 하례회 등 각종 연례행사를 실시 중에 있고, 대법원 행사시나 대한변협 행사시 상호 초청하여 진행하는 행사가 있음

- 추진 보류 이유

- 관례대로 이루어져 온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라는 대법원장님의 기치에 어긋난다는 외부의 비판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 그 외 추진 보류 압박 방안

- ▶ 변론에 있어 각종 우선권 등 배제
 - 변론 순서 당사자 대비 우선권 배제
 - 기일 지정시 대리인 일정 배려 배제
- ▶ 각종 소송법상 제도 엄격 준수, 소송지휘권 엄정한 행사
 -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 엄격히 적용
 - 변론 연기 요청 원칙적 불허
 - 증거신청 절차 엄정 준수

6. 향후 계획

- 추진 가능한 압박 수단에 관하여 추진 여부 정책결정

- ① 변호사 평가제 도입 추진 의사 피력 / ②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반대 / ③ 대한변협신문 광고 게재 중단 / ④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공탁지원금(5억 원) 규모 축소

▣ 정책결정에 따른 집행

- 변호사 평가제 도입 준비 TFT 구성 등 <끝>



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 전략

2018. 7. 31.

기획조정심의관(鄭)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 입법과 관련하여 **국회의 일부 반대 움직임 극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 여당[수뇌부]·야당[일부 의원]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강함
 - 문제의 심각성 ⇨ 반대 세력들이 주로 법사위에 포진되어 있음
 - 특히 야당 의원들의 반대 기류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특히 민변과 연계성 강한 親盧 의원들이 반대 세력의 중심임
 - 대표적으로 전해철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 등
 - 그리고 민변은 그 자체로서도 **변호사단체로서 일반적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상고법원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 방위적 접촉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 ☑ '민변 법사위원장' 이○○ 변호사
▶ '대한변협 상고심개선연구위원'으로서 각종 토론회에 참석 ⇨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대한변협의 의견으로 피력하고 있음
- **국회와 일반 여론의 상고심 반대 움직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민변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법무부·검찰 출신 의원들에 대한 공략은 부적당한 타이밍
 - 민변의 최근 현황 분석, 실질적 목표 파악, 적극적 대응 전략 모색



2. 현황 분석

▣ 민변 조직 개관

- 회원 수 1,000명 육박 ⇨ 2014년 현재 935명
- 주요 임원
 - 회장[1인: 한○○], 부회장[3인: 이○○·이○○·정○○], 각 위원회[위원장 13인], 사무총장[조○○], 각 지부장
 -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2년 ⇨ 현 한○○ 회장 2014. 5. 선출
- 핵심 조직[총괄] ⇨ 집행위원회
 - 구성 ⇨ 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 사실상 실무적인 의사 결정에 있어 최고 기관 역할
- 각 위원회
 - 총 1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각 위원장은 집행위원과 대의원 당 연직 ⇨ 사법[위원장 이○○], 과거사 청산, 미군 문제, 통일, 여성 인권, 환경, 노동, 언론, 민생 경제, 교육·청소년, 국제 연대, 소수자, 외교통상
 - 민변 구성원은 모두 각자 관심 분야 위원회를 선택하여 소속됨 ⇨ 따라서 위원회 구성원의 숫자가 매우 많고(수십 명씩), 위원장의 역할이 절대적임

☑ 야당 원내대표 방문단 구성원

- ▶ 2014. 12. 5.(금) 우윤근 원내대표 방문 ⇨ 상고법원 반대의견 전달
- ▶ 집행위원회 핵심 임원[회장·부회장·사무총장], 사법위원장으로 구성 ⇨ 한○○ 회장, 이○○ 부회장, 조○○ 사무총장, 이○○ 사법위원장, 송○○ 변호사(※ 현재 민변 쌀 대책팀장으로서 관련 입법 의견 때문에 참석) 등 5인

- 총회, 대의원회
 -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있기는 하나, 총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대의원회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 ⇨ 집행위원회 구성원과 본부와 각 지부 선출 회원으로 구성, 매년 1월과 9월 개최하여 중요 사항 결정



▣ **의사 결정 방식** ⇨ **각 위원회 내지 개별 구성원의 자율성 존중**

- [원칙]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안에 관한 대외적인 의사 표명·방침 결정은 각 위원회의 제안으로 집행위원회의 논의를 거침, 중요 사항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함
- [실제] 극히 중요하고 거시적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나 개별 구성원이 개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자율적·독자적으로 대외 활동을 펼치고 이에 대하여 여타 구성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사실상 민변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지는 방식임 ⇨ 이○○ 사법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
- [착안점] 상고법원안에 대한 현재까지의 입장도 역시 위와 같이 약한 방식의 의사 결정 방식을 거친 산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성원의 별도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수정·약화 가능성 있다고 보임

☑ **실제 회원들 사이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

- ▶ 회원 수 1,000명에 육박[올해 현재 935명] ⇨ 초창기부터 유지하고 있었던 사상적 일체성·유대감 상실·희박
- ▶ 다양한 사상적 스펙트럼 존재 ⇨ 상고법원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갈릴 것으로 분석됨

▣ **실질적 목표** ⇨ **진보 성향 인사의 대법원 진출**

-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표면적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음
 - 신○○ 대법관 후임 대법관에 진보 성향 인사를 임명 시 ⇨ 상고법원안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함
- 하지만 위와 같은 실질적 목표에 높은 비중과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현재 민변의 최대 관심사는 현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른 후속 대응[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 향후 당분간 대법원에 의지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할 사항이 많은 상황임



3. 대응 전략

▣ [원칙] 12. 22. 수립·보고한 '대응 전략 기본 방향' 유지

▣ ① 강은強穩 양면 전략 필요

☑ 무시·분리 전략 vs. 극복·설득 전략 ?

- ▶ 민변의 영향력·파급력이 그리 크지 않고 핵심 인사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무시·분리 전략이 더 낫다는 견해도 일견 타당성이 있음
- ▶ 하지만, 현재 상고법원 입법 추진 환경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볼 때, **전 방위적인 적극적 공략이 필요한 시점임** ⇨ 가능성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략 포인트에 대하여 차근차근히 대응하여 긍정적 효과를 꾸준히 축적**하여야 함

- [대응 방향 기초] 약한 고리에 대하여는 **총력 돌파** 전략, 강한 고리에 대하여는 **협상**을 추진 ⇨ 양동 작전 구사

● [약한 고리 대응]

- ① 다양한 사상·의견의 스펙트럼에서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민변 내 상고법원안 찬성 세력 확인·모색[접촉 채널의 신속한 확보: 문병호 의원]
- ②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도·독려**[접촉면 확대·소통 강화]하여 세력 약화 시도
- ③ 가까운 시점 또는 1월 대의원회에서 독자적 의견 제출 목표

☑ 조○ 교수 등 진보 성향 교수 접촉

- ▶ 조○ 교수 등 ⇨ SNS 등을 통하여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교수들 존재함
- ▶ **접촉·소통 가능성 있음** ⇨ 반드시 "상고법원안 찬성" 의견까지 밝히지 않더라도 "**상고법원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음**"이라는 **정도의 의견**만 밝히는 것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클 것임 ⇨ "진보 진영의 단일한 공식 입장이 상고법원안 반대가 아님"을 진영 내에 확인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

☑ 최원식 의원 토론회 지원

- ▶ 최원식 의원 ⇨ 민변 회원 출신
- ▶ 2월 중 개최 예정으로 **민변과 의견이 다르다는 점 밝힐 예정** ⇨ 민변에 대한 직접적 대응과는 별도로 **간접적이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강한 고리 대응]

- ① 통진당 후속 대응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대한 공세를 늦출 움직임이 없는지 동향 파악 우선 ⇨ 다만, 이에 관한 적극적 빅딜 모색은 소송에 관한 내용으로서 극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지양

☑ 이○○ 위원장에 대한 대응

- ▶ 지나친 비주류 의식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평 ⇨ 직접적 접촉·대응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 ▶ 몇몇 법원 인사가 접촉해보았음 ⇨ 오히려 압박에 대한 불만 표출

- ② 강한 고리에 해당하는 주도적인 반대 세력에 대한 대응 ⇨ 시변 등 대적할만한 보수적 변호사단체로 하여금 반대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여 대응하는 방안 검토

■ ② 범 실·국 차원 전술 모색 필요

● 민변에 대한 다양한 카드[아이템] 발굴과 기대 효과 평가 필요

- 사법정책실 중심으로 긴밀한 정보 공유와 전략 수립 필요

● 특히 민변뿐만 아니라 주요 공략 대상에 대한 상시적인 대응 전략 팀 가동이 필요한 시점임

-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파악·내부 전파·공유가 필요

※ 12. 22. 수립 대응 전략팀 구성[案] 내용

- ▶ 역할 ⇨ 주요 타깃별로 상시적 내부 동향 파악과 맞춤형 대응 전략 개발
- ▶ 구성 ⇨ 주요 타깃별 전담·역할 분담 체제 구축
 - 컨트롤 타워 ⇨ 차장
 - 국회·법무부·BH ⇨ 기획조정실
 - 민변·경실련·참여연대 ⇨ 사법정책실
 - 언론 ⇨ 공보관실



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추진동력 확보방안 검토

2018. 7. 31.

기획조정심의관(鄭)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 입법에 불리한 환경이 호전되지 않고 있음

- 상고법원 입법 견제·방해 세력은 점점 확대되어가는 양상임
 -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결정 ⇨ 법무부·헌재 입지 강화
 - 대한변협 ⇨ 신임 협회장으로 법원에 비우호적인 하○○ 후보 당선

■ 특히 BH의 경우 단순한 공략 방법으로는 한계에 봉착

- 핵심 보좌진의 親검찰 구성에 아무런 변화 없음
 - 오히려 현재와 같은 법무부 득세 분위기에서는 비서실장 교체 시 親검찰 구성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마저 있음 ⇨ 황 법무장관의 비서실장 임명 등
- BH를 공략하기 위하여 다양한 설득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혜적 조치를 통한 것이므로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국면 자체를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 카드 검토가 필요

- 발상의 전환 필요 ⇨ BH를 단순한 '설득의 客體'가 아닌 '입법 추진의 主體'로 끌어들이 수 있는 적극적 전략 개발 필요
 - 다만, 그로 인한 악영향·문제점 등에 관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요함

2. BH 현황 분석

■ 집권 1~2년차 ⇨ 가시적인 성과업적을 거의 도출하지 못하였음

- 집권 1년차의 인사 난맥상, 집권 2년차의 세월호 사고, 최근의 비선 실세 논란 등 ⇨ 뚜렷한 성과 없이 지지율 하락세 계속



■ **집권 3년차** ⇨ **불안감·절박감** 속에 가시적 성과를 쌓기 위한 **‘골든 타임’ 선언**

- 올해는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에 해당함
 - 전국 단위 선거가 없음 ⇨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총선과 대선으로 인한 정치 이슈에 매몰될 수밖에 없음
 - 내년부터는 집권 4년차로서 레임덕 시작 ⇨ 하지만 최근 비선 실세 논란 등으로 인하여 조기 레임덕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음

■ 이미 제시되어있는 두 가지 **화두** ⇨ **‘경제’와 ‘통일’**

- [경제] ⇨ 각종 정치 이슈를 잠재우고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 준비를 위한 목적
 - 이른바 ‘경제위기론’ ⇨ 개헌론 등 소모적인 정쟁 요소를 압살하는 한편, 레임덕의 시작 시기를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전통적 방법
 - 또한 역대 정권의 성패는 임기 말의 각종 경제지표에 따라 평가됨되었고, 정권 재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

☑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 ▶ 2014. 1. 발표 ⇨ ※‘두 달 만에 급조된 계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①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②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③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

- [통일] ⇨ 총선·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 목적
 - 內治에서의 실책을, 다소 추상적이고 이벤트 성격이 강한 外治, 특히 통일 분야에서 만회하려는 목적
 - 특히 ‘통일대박론’이라는 프레임 선점은 진보층 공약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오히려 북한 지도층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어 긴장감 조성을 통한 보수층 결집에도 상당히 유효한 다목적 카드임



■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집권 3년차 어젠다' ⇨ '4대 부문 구조개혁'**

- 최근 BH는 역대 정권의 경험에 따라 조기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집권 3년차 어젠다'를 모색해왔음

☑ **역대 정권의 조기 레임덕 방지를 위한 '집권 3년차 어젠다' 선포 사례**

- ▶ 문민정부 ⇨ 역사바로세우기 운동 ▶ 국민의정부 ⇨ 남북정상회담 추진
- ▶ 참여정부 ⇨ 대연정 제안 ▶ MB정부 ⇨ 4대강 사업 강행 선언

- 하지만 획기적인 아이템은 찾지 못하였고, 대신 그 역할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된 **'4대 부문 구조개혁'**이 할 것이라고 함

☑ **신년 기자회견 중 '4대 부문 구조개혁' 관련 부분**

- ▶ 첫째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중략)...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 ▶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서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중략)...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입니다...(중략)...**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 ▶ 또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중략)...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습니다...(중략)...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중략)...**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합니다.
- ▶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중략)...**공공기관부터** **술선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 따라서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사법부 관련 아이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BH 인적 쇄신 ⇨ 새로운 정책 아이템 발굴·제안의 호기**

- 특히 민정 라인 개편 ⇨ 새 정책 건의에 대한 의욕이 충만할 것

- 하지만 **태생적 한계**[경제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짐]에 따라 새로운 아이템 발굴보다 **집권 후반기 각종 게이트 예방·대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창의적인 아이템 제공 시 **상당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관측됨



3. 추진 방향 개요

■ BH가 주도하여 **정권의 성과업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상고법원안을 포함시켜 함께 추진함**

-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물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제공하여야 함
 - 사법부 자체적인 연구·검토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함
 - 지나치게 많은 아이템이 포함되면 안 됨

■ BH의 **관심을 유도할만한 내용**이면서 **사법부에 우호적인 내용**으로 구성함

- 관심 유도 ⇨ 최대 현안인 경제 관련 아이템이 적당함

☑ 경제 vs. 사법 ?

- ▶ 한 국가의 법치주의 실현과 GDP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있음 ⇨ 이코노미스트誌에 실린 우측 그래프는 이를 나타내는 것임
- ▶ 2007년도 KDI 보고서 ⇨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순위의 법질서만 확보되어도 GDP가 1% 추가 성장한다'라는 분석
- ▶ 세계은행 발간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 분쟁 해결[Enforcing Contract] 부문이 주요 평가 요소 중 하나[대한민국 사법부 3년 연속 2위 차지]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직접 추진하도록 하여 강한 추진력을 갖도록 함**

- BH가 '설득의 客體'가 아니라 '입법 추진의 主體'가 되도록 함
 - 그러자면 BH가 주도할만한 큰 그림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함
- 역대 정부에서 설치되었던 사법개혁 논의 기구들을 참고할만함

☑ 역대 정부 사법개혁 논의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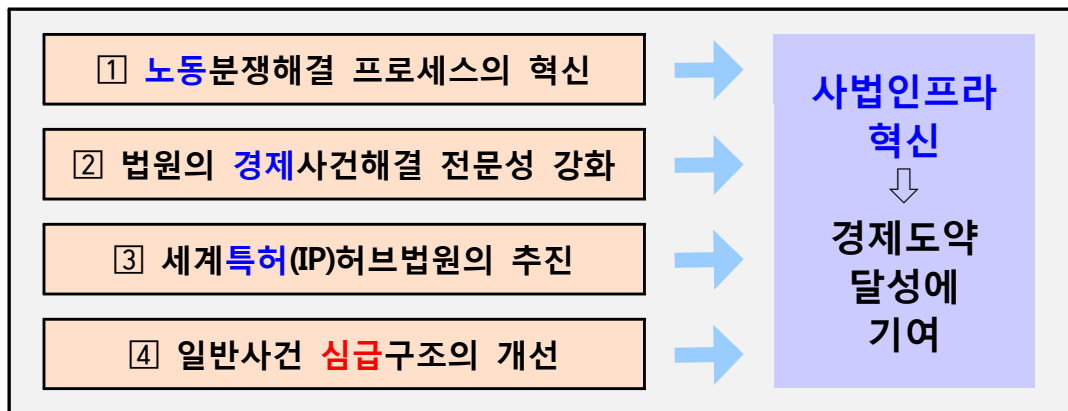
- ▶ 문민정부 ⇨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발전위원회[사발위], 국무총리 산하 세계화추진위원회[세추위]
- ▶ 국민의정부 ⇨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
- ▶ 참여정부 ⇨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 ▶ MB정부 ⇨ 국회 소속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 타이틀 네이밍 ⇨ 가칭 '**경제도약을 위한 사법인프라 혁신플랜**'

- 자칫 사법부 전반에 관한 개혁 논의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 '경제' 관련 사안으로 한정하고, '반성적'인 '개혁(reformation)'이 아닌 '창조적'인 '혁신(innovation)'으로 네이밍
- '혁신'은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사용된 워딩이기도 함
- 설치 위원회 명칭(案) ⇨ 대통령 산하 '사법인프라혁신위원회'

▣ 논의 주제



- [착안점] 4대 부문 구조개혁 ⇨ 공공, 노동, 금융, 교육

▣ 추진 주체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사법인프라혁신위원회**'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추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형식의 논의 기구를 설치하여 구체적 추진 방안 논의
- 전체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실무지원단으로 구성
- 위원 ⇨ 법원, 법무부, 변호사단체, 법학교수, 행정부, 시민단체, 언론계, 국회, 헌법재판소,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등의 인사를 총망라함
- 간사 ⇨ 청와대(법무비서관실)와 법원의 인사가 맡아 주도하도록 함

▣ 추진 기간 ⇨ 약 **8~10개월[연내 최종 결론 도출]**

- 특히 상고법원 설치 방안의 경우 이른 단계에 논의 ⇨ 결론 도출 후 곧바로 입법 추진 시도



4. 논의 주제 검토

가. 노동분쟁해결 프로세스의 혁신

▣ [개요] **이원화된 현행 분쟁 해결 절차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역할을 적절히 재조정하여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전문법원으로서 **노동법원 설치 문제**까지 논의

▣ [관심 유발 point]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

● [對 BH 일반] 집권 3년차 어젠다로 삼고 있는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가장 핵심적인 과제

- 4대 부문 구조개혁 ⇨ 공공, 노동, 금융, 교육

- 게다가 **VIP는 노사정위원회에게 3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신년 기자회견 중 관련 부분**

▶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對 민정 라인] 검찰의 관심사 중 하나인 **'공안 사건 신속 처리 요청' 또는 '공안 사건 전담부 설치 요청'과 결부**시킬 수 있음

☑ **2014년 대검찰청 요청 사항**

▶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엄정한 재판을 통해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009년 철도파업 관련 업무방해 사건의 신속한 판결 선고가 필요함**

-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 이후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수사 실무에 혼란이 발생하므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시급함"**

☑ **"공안 사건 전담 재판부 필요, 검찰, 법원에 신설 요청 검토"** [2014. 10. 15. 법률신문 보도]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간첩사건 무죄 판결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간첩 사건과 같은 공안 사건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검토해야 하는 자료가 매우 많은 만큼 법원에 반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가 있는 것처럼 공안 사건 역시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이른 시일 내에 법원행정처에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물론 검찰의 요청은 주로 안보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것이기는 하나, 노동 관련 공안 사건에도 일정 부분 관심이 두어져있으므로 이를 추진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논의 방향·내용]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석,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 검토 등

● 현행 절차의 문제점 분석

- 절차의 복잡·중복·지연, 노동위원회 판정의 실효성 미흡, 법원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 분쟁의 자주적 해결에 관한 배려 미흡 등

●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석, 개선 방안 검토

-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의 법원 이관, 조정 기능의 강화 등

● 노동법원 설치 등을 포함한 법원의 역할 제고 방안 검토

- 전문법원 설치 필요성, 설치 시 노동위원회 역할 축소 여부
- 참심관 제도 도입 여부
- ※현재 최원식 의원(새정치연합)이 발의한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노동소송법 입법안)이 국회 계류 중임

▣ [주의·고려 사항]

●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노동법원 도입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하려 하였다가 철회한 바 있음

- ∴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음, 현재의 노동위원회와 노동전담재판부의 활동이 꽤 효율적·경제적임,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논의(‘시기상조’ 결론) 이후 의미 있는 환경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등



나. 법원의 경제사건 해결역량 강화

▣ [개요] 경제사건, 특히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제반 사건에 관한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함

- 파산법원·상사법원·해사법원 설치 또는 이를 통합한 '경제법원'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

- 상사법원 ⇨ 국제거래, 해상, 보험, 증권, 회사, 신용장, 리스 사건 등
- 나아가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중재센터'의 설치 문제도 논의 가능

▣ [관심 유발 point]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전반에 정면으로 대응

- [對 BH 일반] '경제법원'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아이템으로 정책에 관한 주목도를 높일 수 있음

- 앞서 '노동분쟁해결 프로세스의 혁신' 논의가 노동법원 설치론으로 이어질 경우 재계의 반발·우려가 있을 수 있음 ⇨ '경제법원 설치론'으로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음

☑ 상사법원과 경제법원의 해외 설치 사례

- ▶ 상사법원 ⇨ 프랑스에는 상사사건에 관한 제1심 법원으로서 직업 법관이 아닌 상인들에 의하여 선출된 재판관으로 구성된 상사법원이 존재
- ▶ 경제법원 ⇨ 베트남,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등 사회주의국가에 존재,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 담당

☑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미국 파산법원

- ▶ 미국 도산 법제의 발전은 창업과 실패, 재기를 통해 미국을 역동적인 기업과 혁신의 나라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 특히 금융 위기 당시 미국 파산법원 덕분에 미국이 유럽보다 경제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다고 함 ⇨ **Obama 정부의 큰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편, 해사법원 설치 논의를 통하여 세월호 사건,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과 연관된 시의성을 강조하고 대국민 홍보할 수 있음

☑ "해상사건 신속 해결...해사법원 설치해야" [2014. 7. 21. 법률신문 보도]



▶ “김○○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6일 고려대 로스쿨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예방 대책 세미나’에서 “유류 오염과 대형 여객사건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가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한다”며...(중략)...“**해사법원이 설치되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재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사법원이 없는 우리나라는...(중략)...결국 **외국에 소송비용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 영국과 중국의 해사법원 설치 사례

▶ 영국

- 런던에 설치
- **국제 규범 형성에 강력한 영향력 행사 중** ⇨ 우리나라 해사변호사들조차 우리 법원의 판사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영국의 해사판사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소신이나 재판 경향, 과거 판례까지 잘 알고 있는 정도임

▶ 중국

- **10개의 해사법원과 34개 지원** 설치
- 영토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서 **해안선이 매우 짧은 나라**에 속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영해도 넓지 않으나, 발 빠르게 해사법원을 설치**해서 세계무대에 계속 얼굴을 내밀고 있다고 함
- 해사 분야에 관한 한 **우리를 현저히 앞서고 있고**, 중국 경제 성장에 따라 앞으로 그 **격차가 심해질 전망** ⇨ **향후 주요 사건이 중국 해사법원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싱가포르식 ‘국제중재센터’ 아이템으로도 대국민 홍보가 가능함

☑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 ▶ 싱가포르의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 최대의 국제 중재지**로 자리 잡고 있음 ⇨ **상당한 투자 유치 효과** 있고, 접수 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
- ▶ **강점** ⇨ 중립지로서의 이미지, 동서양 어디에서나 **연결성 탁월, 효율적 법률 시스템** 보유, 적극적인 **정부 지원**(감세 혜택 등)
- ▶ 최근 국제조정센터, 국제상사재판소 등 **국제 분쟁 해결 기구 추가 설립** ⇨ 국제 분쟁 해결의 **원스톱 서비스** 추구

- [對 민정 라인]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중점검찰청 지정 제도**’와 **방향**을 함께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음



☑ 2014년 대검찰청 요청 사항

- ▶ “검찰이 추진 중인 ‘중점검찰청 지정 제도’에 상응하는 ‘중점법원 제도’ 도입 요청
- 수사의 전문성 제고와 광역 수사(관할 확대) 원활화 목표”

-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에서 ‘특성화 법원 제도 도입’이라는 정책으로 검찰의 요청을 일부 반영한 바도 있음

☑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 중 해당 부분

- ▶ “관할지역과 법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 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법원에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해당 법원을 ‘특성화 법원’으로 운영
- ▶ 특성화 법원 관할 예시
 - 국제거래 사건 ⇨ 중앙지법 - 증권·금융 사건 ⇨ 남부지법
 - 언론·개인정보침해 사건 ⇨ 서부지법 - 해사 사건 ⇨ 부산지법
- ▶ 특성화 법원에는 복수의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여, 전문재판부 사이의 교류 및 토의를 활성화시키고, 전문 유관기관·전문가 사이의 간담회,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여 전문성 배양에 힘쓰도록 함”

▣ [논의 방향·내용]

- 전담재판부 설치 확대 논의, 법관의 전문성 확보 방안 검토
 - 전문법관 확보·육성 방안 등
- 파산법원·상사법원·해사법원 등 전문법원 설치 논의
 - 사건 수 등을 고려한 설치 필요성, 구체적 설치 방향 검토, 추진 동력 확보
- 통합 경제법원 설치 논의
 - 싱가포르식 ‘국제중재센터’ 설립 여부

▣ [주의·고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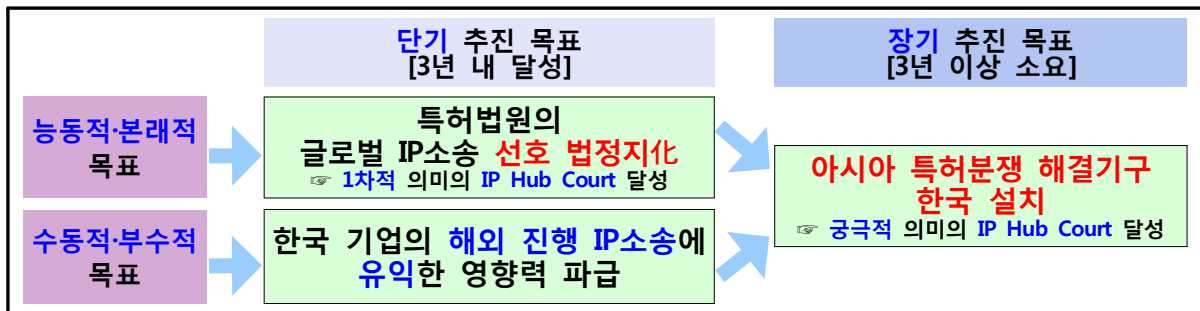
- 파산법원 설치에 관하여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있으나, 상사법원과 해사법원에 관하여는 논의가 부족함
 - 1990년대 후반의 전문법원 설치에 관한 초기 논의 이후로는 가시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음



다. 세계특허(IP)허브법원의 추진

- ▣ [개요] 특허법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IP소송의 선호 법정지화**하고, **공극적으로 아시아 특허분쟁 해결기구**를 한국에 유치

- 이를 통하여 상당한 투자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관심 유발 point] **‘창조경제’ 컨셉에 그대로 부합하는 新전략 산업**

- [對 BH 일반] 사법 영역이 단순히 분쟁 해결이라는 소극적 분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분야일 수 있음을 강조
-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통하여 공공 부문 혁신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확보에 관한 청사진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임

☑ **미국 텍사스 동부 법원 사례 ⇨ IP허브국가 지위 획득의 중요성**

▶ **법관 전문성 확보**(특히 ○○○○ 판사) ⇨ 특허소송 러시(2000년 20건 ⇨ 2008년 317건, 시카고·뉴욕·워싱턴 능가)

▶ **법원 소재지인 시골 소도시 마샬Marshall** ⇨ 대형 로펌 지사 유치, 투자 활성화 등으로 지역 경제 크게 부흥

- 호텔 등 숙박기관 투숙률 95%, 사무실 임대 활발, 건물 신축 등

☑ **최근 중국의 발 빠른 행보**

▶ **[6월]** 특허법원 설립안 발표 ⇨ **[8월]** 베이징·상하이·광저우에 설치 결정 ⇨ **[11월]** 베이징특허법원 조직 구성

- 또한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라는 주목도 높은 정책 아이টে을 제시하여 상당한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강조

- [對 민정 라인] 민정 라인의 경제발전 기여 아이টে을 발굴 노력을



VIP에게 부각시킬 수 있고, '사법 한류' 전략으로 어필도 가능

- VIP는 각종 산업에서 대한민국이 중심에 서는 'OO한류' 전략에 상당한 호감·관심을 나타내왔음

☑ 국회에도 이미 추진위원회 설치·가동 중

▶ **대한민국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 ⇨ 공동대표 정○○ 부의장, 원○○ 의원, 이○○ 교수

▶ **추진 필요성에 관하여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확보되어 있음을 반증

■ [논의 방향·내용]

● **물적 기반**

- 국제재판부 설치 여부
- 특허법원 관할 관련 문제, 해외 전자소송 인프라 구축 방안, ADR 연계 방안

● **인적 기반**

- 전문법관 선발 문제
- 통·번역인 확보 방안, 기술전문가의 재판 관여 방안

● **법제도적 기반**

- 심리 방식 개선 방안, 증거 확보 수단 개선 방안
-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여부, 무효율의 적정성 여부
- 기타 용어 순화 문제, 각종 연구회 구성 방안

● **대외적 기반**

- 국제회의 개최 방안, 국제저널 등 발간·공개 방안
- 대외 교류·교섭 방안

■ [주의·고려 사항]

- 현재 사법부 차원의 'IP허브코트 추진단'이 가동 중이고, 곧 산업계, 학계 등 IP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IP허브코트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을 수립 중임



라. 일반사건 심급구조의 개선

▣ [개요] **상고법원 입법안의 논의를 유도하되, 표면에 바로 내세우지는 않음**

- '상고제도 개선 방안' 정도로 유도

▣ [관심 유발 point] **노동·금융·특허 등 모든 경제사건의 최종심인 상고심 개혁이 사법인프라 혁신의 요체임을 강조**

- 통상임금 소송 등의 경험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권리구제 기능 강화를 통한 분쟁 해결 비용·시간의 절감과, 정책법원 기능 강화를 통한 경제 정책 방향 제시·사회 통합 강화가 경제도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

▣ [논의 방향·내용]

- 상고법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한 상고심 제도 전반의 개선 논의
 - 상고법원 설치 시 긍정적 효과에 관한 공세적인 논쟁 유발 필요
 -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심 충실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상고법원이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각종 예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 상고법원 설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논의의 프레임 선점이 필요함

▣ [주의·고려 사항]

- 대법관 증원론에 관한 논의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간사로서 적극 개입하여 논의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함
- 어느 정도 추진 동력을 확보하면 그것이 곧바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성 확보를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함
 - 위원회 전체의 논의 결과 도출까지 기다릴 경우 국회에서의 효율적인 입법 추진 일정을 실기하게 될 우려가 있음



5. 추가 검토 사항

■ ①BH의 관심 유도 문제

- [우려①] 정권 출범 시 또는 신임 대법원장 취임 시에 추진할 법한 사업으로서 다소 생뚱맞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 [우려②] 상고법원안을 추진하기 위한 의도가 간파되면 사법부의 이미지에 손상만 있을 수 있음
- [반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임을 강력하게 설득하여야 함
 - 또한 어차피 다소간의 의도 노출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는 감수하여야 함

■ ②추진의 효율성 문제

- [우려①] 다른 아이템들과 패키지 형태로 추진할 경우 전체적으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내년 초 총선으로 인하여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회 상황을 장담하기 어려움
- [우려②] 과거의 사법 개혁 논의 기구의 예를 살펴볼 때 대통령·국무총리·국회가 주도한 경우는 논란과 갈등만 초래하였을 뿐 큰 성과가 없었음

☑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과거의 사법 개혁 논의 기구

- ▶ 1993년 문민정부의 사법제도발전위원회[사발위]와 2003년 참여정부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 모두 법원이 주도한 경우에 해당함

- [반론] 이 방안 외에 마땅한 국면 전환 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추진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비교·감안하여야 함

■ ③추진 방향의 왜곡 문제

- [우려] 외부 인사에게 주도권을 넘기게 되므로 추진 방향이 왜곡되



거나 사법부가 원하지 않는 분야로 논의가 확산될 수 있음

- ex. 상고법원안 대신 대법관 증원론 추진으로 결론 도출 또는 전면적인 사법 개혁이 논의 대상에 포함
- 특히 BH 핵심 보좌 라인이 親검찰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방향을 왜곡시킬 위험성은 상당함
- [반론] 논의 주제 자체를 앞서 언급한 항목에만 적극적으로 한정하면 됨, 또한 BH도 政爭과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분야로 논의를 확산시키기를 원하지 않을 것임
- 법무부·검찰에서도 자칫 검찰 개혁으로 논쟁이 확대되는 것은 원치 않음
- 타이틀 네이밍 등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4법원의 경제 사안에 관한 지나친 개입·편향성 지적 문제

- [우려] 법원이 경제 문제에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한다는 입장을 주게 되면 향후 경제 관련 사건 처리 시에 지속적으로 부담으로 남게 될 수 있음
-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재판에 대한 공정성·독립성도 논쟁에 오르내릴 수 있을 것임
- 특히 진보 성향의 언론기관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강해질 것임
- [반론] 공식적·외형적으로는 BH 주도로 포장·강조하고 법원은 가급적 전면에서 나서지 않도록 함. 끝.

상고심개선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

최근 법조계의 화두는 단연 상고법원이고 기대감도 높다. 공청회도 열렸고, 국회의원 168명이 법률안도 발의했다.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은 상고심개선에 대한 책임감이다.

필자 소견에 반대의견 상당수는 단순비난이거나 형식논리에 그치고 있다. 책임감 있는 비판이 드물다. 도대체 발등에 떨어진 상고심의 난맥상은 어찌 풀자는 것인가. 현재 대법원은 연간 3만6,000건, 대법관 1인당 3,000건이라는 엄청난 양을 처리하고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이 100건 정도라는데, 차이가 극명하다.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사건들이 속수무책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그렇다고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는 개인사건 처리가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다. 판결이유 없이 기각하고 마는 심리불속행사건이 매년 8,000건이다. 너무 많은 사건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해왔다고 하나 10년 동안 두배로 늘었다하니 앞으로가 더 문제다. 당장 상고심의 정상화가 시급한데, 대안없이 발목잡기식의 반대만 하는 것은 이대로도 좋다는 것인가.

혹자는 대법관을 늘려서 해결하자고 하는데, 대법관 몇 명을 늘린다고 해결될 사건 수가 아니다. 대법관 1인당 사건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500명의 대법관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많은 수로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국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사건은 공개변론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 전원의 치열한 토론을 거치는 전원합의체재판이 필수적인데, 투표로 결론을 선택하는 대의기관도 아닌 대법원에서 수십 명의 대법관이 어떻게 토론을 하고 어떻게 결론을 낸다는 말인가. 사건이 늘면 그 때마다 계속 늘리나. 막대한 증원예산은 어쩔 것인가. 현실성이 없고 개선에 대한 책임감이 아쉽다.

상고법관을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므로, 국민주권을 침해할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지극히 형식논리에 불과한 발목

잡기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각국은 상고허가제를 채택하여 대부분 사건은 아예 최고법원 재판도 받지 못하는데, 이들 나라는 국민주권주의가 아닌가. 이들 나라에서 위헌 논란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모든 사건 최종심을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대법원이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헌법재판소도 재판심급은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모든 최종심을 국회동의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맡아야만 국민주권이 실현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임명에 국회나 대통령의 의견이 꼭 필요하다면 법제도를 만들면 될 것 아닌가. 논의를 거쳐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근거 없이 국민주권까지 거론하는 것은 개선의 책임감이 부족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주장 같아 아쉽다.

상고심문제는 너무 현실적이고 급박하다.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루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적사건해결과 사적권리구제 중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처리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 모두 소중하므로 다 잡겠다는 발상이, 상고허가제로 사적권리구제기능을 일부 포기한 외국보다 국민입장에서 좋아 보인다. 대법원전원합의체 활성화에 거는 기대도 크다. 상고사건 중 공적사건이 170건 정도라는데, 현재는 사건부담으로 불과 20건만 전원합의체로 한다.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모두 전원합의체로 할 수 있다. 국민 한사람에게는 절실한 사적사건은 상고법원이 전담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고, 심리불속행 폐지로 명쾌한 판결이유도 받아볼 수 있겠다.

이만하면 해볼 만하지 않은가. 상고심개선은 시급한 당면과제이므로 책임감 있게 봐야 한다. 지금까지 반대의견 중 상고법원 자체를 반대할 만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 상고법원 틀 내에서 얼마든지 해결가능하다. 이번만큼은 상고심 개선논의가 무책임하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한다.



상고법원 입법추진동력 boom-up 방안 검토

2018. 7. 31.

기획조생실

1. 검토 배경

■ 현재 상고법원 입법 추진 동력은 약화되어 있고 사회적 관심·분위기도 가라앉아 있는 상황임

- 사법부 외부 ⇨ BH發 국정 난맥상이 계속되어 정치적 사안에 관한 발제 자체가 어려운 상황

☑ 최근의 BH 상황

- ▶ 문건 유출·비선 국정 개입 논란 ⇨ 민정수석 교체 등 인적 쇄신 단행하였으나, 국무총리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하여 또다시 이상 기류 발생
- ▶ 연말정산·건강보험 개혁 논란 ⇨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제공
- ▶ 경제·통일 골든타임 선언 ⇨ 난국 타개를 위해 정치적 논의는 자제·기피 분위기

- 사법부 내부 ⇨ 여러 현안 대처로 인하여 역량이 다소 분산
- 최 판사·유 판사 사건 등 ⇨ 부정적 관심이 집중되었다가 진정됨

■ 자칫 지루한 지구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함

- 시간 지연이 결코 사법부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음

☑ 최악의 경우 예상 시나리오

- ▶ 2월초 법사위 전체회의·제1소위 상정
- ▶ 소위에서 “계속 심사” 의견으로 속행 ⇨ 사실상 논의 보류
- ▶ 하반기 여야 총선 대비 국면 돌입 ⇨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의안 자동 폐기

■ 입법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관심과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boom-up 방안이 필요함

- 각계 현황 점검 ⇨ 분위기 전환용 카드 검토



2. 현황과 타개책

가. 국회 ⇨ 의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입법조사관을 상대로 다각적인 설득 작업 필요

▣ [현황] 반대 기류가 전반적으로 강하고 특히 주로 법사위에 반대 세력이 포진하고 있음

- 반대 세력 핵심 ⇨ 여당 검찰 출신 의원, 야당 親민변 성향 의원들
- 특히 최근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 실무진들로부터 강한 반대 움직임이 감지 ⇨ 입법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 전문위원·입법조사관의 움직임

- ▶ 상고법원안에 대한 1차적 검토를 마친 상황임
- ▶ 편향되고 부족한 정보 속에 오해와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임 ⇨ 반박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으려 하거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 ▶ 대법관 증원론, 대법원 이원적 구성론, 상고허가제 등을 언급하며 상고법원안에 대한 자기 나름의 부정적인 견해·논리를 피력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함

▣ [대책] 특히 전문위원·입법조사관들의 잘못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고안이 필요함

- 좀 더 적극적인 접촉이 필요함 ⇨ 반대 의견이 더욱 고착화되기 전에 설득·설명 작업을 강화하여야 함
- 공략 대상별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 ⇨ 전문위원은 실장·부장판사급이, 입법조사관은 평심의관이 분담
- 공략 포인트 ⇨ 각 전문위원실의 변호사 자격 있는 입법조사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음
- 어쨌든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의원들이므로 의원들에 대한 다양한 설득 작업도 병행할 필요 있음



나. 언론 ⇨ 기고문 게재, 인터뷰 추진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 완화

▣ [현황] 부정적 보도 분위기 확산

● 진보 언론 ⇨ 부정적 보도 경향 강화

- 일련의 시국·노동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YTN 해직 기자 사건 등] 선고 이후 부정적 기류 형성

● 보수 언론 ⇨ 일부 부정적 보도가 공식 입장으로 오인되어 보수 계층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최근의 부정적 보도 사례

▶ 조선일보 정○○ 칼럼 ⇨ 3회에 걸쳐 반대 견해 표명

- 2014. 10. 3. '제2대법원, 국민 지지 얻을 수 있을까'
- 2014. 11. 27. '요즘 판사들이 의원들을 찾는 이유'
- 2015. 1. 17. '상고법원과 삼권분립'

▶ 중앙선데이 ⇨ 최근 대법원의 '상고법원 홍보책자' 내용을 비판하는 기획 기사

- 2015. 2. 1. '국민은 대법 최종심 원해'

▣ [대책①] 대응 기고문 게재

● 성○○ 서울대총장 명의 기고문

- '서울대학교 총장'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헌법학자로서 높은 지명도가 있음 ⇨ 여론 전반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 기대

● 이○○ 전 대한변협 회장 명의 기고문

- 대한변호사협회의 원로 ⇨ 특히 변호사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 기대

● 조○ 교수 명의 기고문

- 한겨레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목표 ⇨ 진보 진영의 단일한 공식 입장이 상고법원안 반대가 아님을 확인시켜 민변 등의 반대 목소리 잠재우는 효과

☑ 민변의 의사 결정 방식

- ▶ 극히 중요하고 거시적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나 개별 구성원이 개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자율적·독자적으로 대외 활동을 펼치고 이에 대하여 여타



구성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사실상 민변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지는 방식

⇒ 사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 표출만으로도 세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음**

- 또한 조 교수는 SNS를 통하여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음 ⇒ 여론 전반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 기대

■ [대책②] 주요 인사 인터뷰 추진

- 김○○ 신임 서울변회 회장, 이○○ 전 대한변협 회장에 대한 법률신문 인터뷰

☑ 김○○ 신임 회장의 입장

▶ 상고법원안에 조건부 찬성 입장

-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상고법관 50명 내외 확보·외부 인사 참여, 상고법원 결정에 대한 특별상고 허용 등 몇 가지 전제조건 제시

- 기고문 게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여론 형성에 긍정적 효과 기대

■ [대책③] 前 대법관 일상 취재

- 前 대법관의 일상을 취재하여 상고심 구조 개편이 불가피함을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방안

- 김○○, 양○○, 안○○ 前 대법관 등

☑ '싹뻗줄 터지도록 업무...' 대법관의 고단한 일상

▶ 2014. 11. 18. SBS 뉴스토리 ⇒ 박○○ 대법관의 일상 소개

다. 법원 내부 ⇒ 적극적 공감대 형성으로 입법 추동력 상실 방지

■ [현황] 막연한 낙관론 또는 무관심 분위기

- 초기에는 다수의 발의 의원 확보로 막연한 낙관론이 확산되었음 ⇒ 현재는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위기감으로 발전되지는 않고 무관심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음

■ [대책] 내부 구성원 대상으로 관심도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지원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 **공감대 형성과 심정적 결속 강화** ⇨ 적전분열 현상으로 인한 **입법 추동력 상실 방지**
 - 개별 법관들이 **다양한 사회 인사들과 접촉**하는 기회에서 **one voice**를 내는 일도 상당히 중요함
- 이를 위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각 필요**
 - 상고법원안의 좌절은 아무리 간단히, 피상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사법부의 위상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결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추진의 불가피성과 긍정적 기대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
 - 특히 **신임 법원장** ⇨ 부임 후 정책에 관한 기본적 이해도 제고, 추진 경과·반대론 반박 논리 숙지 등을 위한 안내 필요 ⇨ **법원장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상고법원안의 주요 골자·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개괄적 안내
 - 신임 법원장·수석부장관사 등을 통하여 법관들에게도 현재 분위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

라. BH·법무부 ⇨ **계속적 물밑 접촉과 의견 조율을 통한 간극 최소화와 협조 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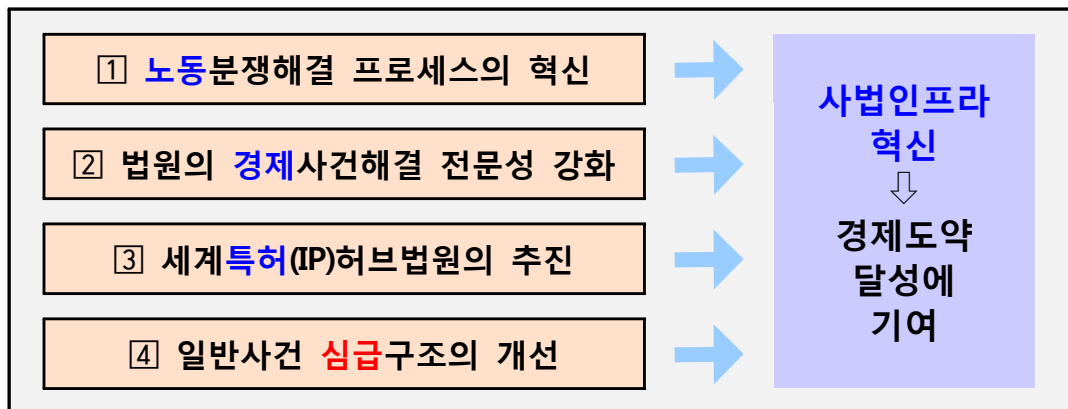
▣ [현황] 단순한 공략 방법은 **한계에 봉착**

- BH ⇨ 핵심 보좌진의 **親검찰** 구성에 큰 변화 없음
 - 다양한 설득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혜적 조치를 통한 것이므로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법무부 ⇨ 반대 입장의 **구심점**
 - 각종 **궤변적 논리**를 늘어놓으며 전 방위적으로 방해 전술 구사

▣ [대책①] BH가 주도하여 **정권의 성과·업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상고법원안을 포함시켜 함께 추진**하도록 함



-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물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BH의 관심을 유도할만한 내용으로 구성함
 - 관심 유도 ⇨ 최대 현안인 경제 관련 아이템이 적당함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직접 추진하도록 하여 강한 추진력을 갖도록 함
 - BH가 '설득의 客體'가 아니라 '입법 추진의 主體'가 되도록 함
- 타이틀 네이밍 ⇨ 가칭 '경제도약을 위한 사법인프라 혁신플랜'
 - 자칫 사법부 전반에 관한 개혁 논의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 '경제' 관련 사안으로 한정하고, '반성적'인 '개혁(reformation)'이 아닌 '창조적'인 '혁신(innovation)'으로 네이밍
- 논의 주제



- [착안점] 4대 부문 구조개혁 ⇨ 공공, 노동, 금융, 교육

■ [대책②] 직접 장관을 접촉하는 방안 검토

- 실질적 반대 이유를 파악하고 상호 의견 조율을 통해 간극을 최소화하며 입법 협조를 유인하는 방안 검토
- 접촉 시기 ⇨ 비서실장 교체 여부가 확실해진 2월말~3월초 이후
 - 현재는 유동적인 정치 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음 ⇨ 후임 비서실장의 실질적 위상과 역할이 파악된 직후 접촉에 나서야 할 것임



● 개별 상황별 대응 방안

- [상황1] 실세 VIP 후견형 ⇨ 상고법원안의 입법 성공 여부가 여전히 BH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게 됨⇨ 법무부장관 접촉 필요성 弱
- [상황2] 실무 VIP 참모형 ⇨ 정책 결정 권한의 중심축이 주무 장관인 법무부장관으로 이동 ⇨ 법무부장관과 본격 협상을 위한 담판 필요

☑ 담판을 위한 각종 방안 예시

▶ 압박 방안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절차적 통제 방안
- 체포영장제도 개혁 방안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추진 방안
-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신문과정에서의 필요적 참여 제도

▶ 회유 방안

-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확대 방안
-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
- 특성화법원 설치 방안
-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방안 (2011. 7. 정부 제출 형소법개정안)
-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 도입 방안 (2011. 7. 정부 제출 형소법개정안)

[끝]

상고심개선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

최근 법조계의 화두는 단연 상고법원이고 기대감도 높다. 공청회도 열렸고, 국회의원 168명이 법률안도 발의했다.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은 상고심개선에 대한 책임감이다.

필자 소견에 반대의견 상당수는 단순비난이거나 형식논리에 그치고 있다. 책임감 있는 비판이 드물다. 도대체 발등에 떨어진 상고심의 난맥상은 어찌 풀자는 것인가. 현재 대법원은 연간 3만6,000건, 대법관 1인당 3,000건이라는 엄청난 양을 처리하고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이 100건 정도라는데, 차이가 극명하다.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사건들이 속수무책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그렇다고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는 개인사건 처리가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다. 판결이유 없이 기각하고 마는 심리불속행사건이 매년 8,000건이다. 너무 많은 사건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해왔다고 하나 10년 동안 두배로 늘었다하니 앞으로가 더 문제다. 당장 상고심의 정상화가 시급한데, 대안없이 발목잡기식의 반대만 하는 것은 이대로도 좋다는 것인가.

혹자는 대법관을 늘려서 해결하자고 하는데, 대법관 몇 명을 늘린다고 해결될 사건 수가 아니다. 어떤 이는 36명, 또 다른 이는 우선 50명으로 하자고 한다. 대법관 1인당 사건수를 독일 수준에 맞추려면 500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많은 수로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국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사건은 공개변론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 전원의 치열한 토론을 거치는 전원합의체재판이 필수적이다. 투표로 결론을 선택하는 대의기관도 아닌 대법원에서 수십 명의 대법관이 어떻게 토론을 하고 어떻게 결론을 낸다는 말인가. 사건이 늘면 그 때마다 계속 늘리나. 막대한 증원예산은 어쩔 것인가. 현실성이 없고 개선에 대한 책임감이 아쉽다.

상고법관을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므로, 국민주권을 침해할 위험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역시 지극히 형식논리에 불과한 발목

잡기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각국은 상고허가제를 채택하여 대부분 사건은 아예 최고법원 재판도 받지 못하는데, 이들 나라는 국민주권주의가 아닌가. 이들 나라에서 위헌 논란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모든 사건 최종심을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대법원이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헌법재판소도 재판심급은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모든 최종심을 국회동의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맡아야만 국민주권이 실현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임명에 국회나 대통령의 의견이 꼭 필요하다면 법제도를 만들면 될 것 아닌가. 논의를 거쳐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근거 없이 국민주권까지 거론하는 것은 개선의 책임감이 부족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주장 같아 아쉽다.

상고심문제는 너무 현실적이고 급박하다.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루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적사건해결과 사적권리구제 중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처리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 모두 소중하므로 다 잡겠다는 발상이, 상고허가제로 사적권리구제기능을 일부 포기한 외국보다 국민입장에서 좋아 보인다. 대법원전원합의체 활성화에 거는 기대도 크다. 상고사건 중 공적 영향력이 큰 사건이 170건 정도라는데, 현재는 사건부담으로 불과 20건만 전원합의체로 한다.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대부분을 전원합의체로 할 것이 기대된다. 국민 한사람에게는 절실한 사적사건은 상고법원이 전담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고, 심리불속행 폐지로 명쾌한 판결이유도 받아볼 수 있겠다.

이만하면 해볼 만하지 않은가. 상고심개선은 시급한 당면과제이므로 책임감 있게 봐야 한다. 지금까지 반대의견 중 상고법원 자체를 반대할 만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 상고법원 틀 내에서 얼마든지 해결가능하다. 이번만큼은 상고심 개선논의가 무책임하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한다.



상고법원 관련 법사위 논의 프레임 변경 추진 검토

2015. 2. .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최근 외부의 상고법원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상고법원 안 입법 추진 동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현재 법사위 내부에서도 상고법원안은 법사위 제1소위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 중인 상태임
- 상고법원안의 법사위 통과 로드맵을 재점검하는 한편, 법사위원들의 찬반 입장, 기존의 법사위 논의 진척 경과 등에 비추어, 현재 상고법원안의 문제점 지적에 집중되고 있는 법사위 논의 프레임을 보다 긍정적·생산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추진할 필요 있음

2. 법사위 통과 로드맵

가. 2월 국회

- 3. 2.(월) 14:00 법사위 전체회의 ⇨ 4월 공청회 개최 의결 추진
- 3. 2.(월) 13:30 '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나. 4월 국회

- 법사위 전체회의 공청회 ⇨ 직후 제1소위 회부 추진
- 법사위 제1소위 본격적 논의
 - ① 사실심 충실화 외부 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 및 성과 홍보
 - ② '상고법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정책연구용역 결과 초안 발표 ⇨ 상



고법원의 경제적 효용 구체적 수치로 홍보

- **③입법 환경 및 논의 진행상황에 따라 수정안 제시** ⇨ [대법원 사건 분류 기준, 상고법원 법관 임명 등 절차, 필수적 변호사 대리, 지부 설치 등]

다. 6월 국회

▣ 법사위 제1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

☑ 6월 국회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임기만료 및 자동폐기 가능성 高

☞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으로, 법안심사는 12월이 돼서야 논의 가능하나, 20대 총선 준비 등으로 상고법원안은 큰 이목을 끌지 못할 것으로 예상

3. 상고법원에 대한 법사위원들 입장

▣ 법사위원들 찬반 입장 (한겨레 1. 7.자 기사 참조)

	찬성(4명)	유보(8명)	반대(3명)
여당	*홍일표 ¹⁾	*노철래, *이병석, 이한성, *정갑윤	김도읍, *박민식
야당	*박지원, *서영교, *임내현	이상민, 전해철, 우윤근, *이춘석	서기호

▣ 2. 5.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질의

- 서기호 위원 ⇨ 상고법관 임명절차 문제 제기, 4심제 논란, 상고사건 증가 원인 등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 임내현 위원 ⇨ 상고법관 임명과정에 대한 대안 제시 필요
- 박민식 위원 ⇨ 헌법재판소와의 관계가 문제,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가 상고제도는 미국과 같이 바꾸는 것이 옳은지
- 노철래 위원 ⇨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1) ‘*’는 공동발의자임



- 전해철 위원 ⇨ 하급심 강화 방안 철저 실시, 대법관 구성 다양화 필요

4. 법사위 논의 프레임 변경 추진

가. 현황 및 개선 필요 ⇨ ‘상고허가제’ 주장 필요

■ ① 상고법원안 VS 대법관 증원론 ⇨ 상고허가제 VS 대법관 증원론

- 상고법원안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고, 상고심 개선 대안으로 대법관 증원론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일부 감지됨
- 현재 구도로서는, 국민 일반에게 상대적으로 생경한 상고법원보다 직관적으로 이해되기 쉬운 대법관 증원론에 보다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상고법원안은 양 극단인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론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법현실에 맞춘 한국형 상고허가제라는 점을 이해시키고, 관철해내기 위해서는, 논의 프레임을 상고허가제 VS 대법관 증원론으로 변경할 필요 강함

■ ② 대법원 VS 법사위원들 ⇨ 법사위원 VS 법사위원

-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할 뿐, 법사위원들 사이에는 생산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인 입법 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법사위원들 중 일부로 하여금 상고허가제의 도입을 주장하게 함으로써, 법사위원간의 논쟁을 촉발시켜 활발한 논의를 유도하는 한편, 대법원은 기존의 수세적 당사자 입장에서 벗어나 객관적 제3자로서의 조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임

나. 법사위 내 ‘상고허가제’ 주장 전파 전략

1) 이병석, 이춘석 위원 설득

■ [새누리당] 이병석 위원



- 포항에 지역구를 둔 국회 부의장 출신 4선 의원 중진으로서, 당내 영향력 뿐만 아니라 법사위 내 부산경남 지역구 위원(김도읍, 박민식 위원) 등에 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대법원이 포항 법원 내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이병석 위원에게 제공하여, 이병석 위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병석 위원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원의 요청을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됨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위원 < 이춘석 위원

- 우윤근 위원은 친 법원 성향이긴 하지만, 원내대표의 직위로 인하여 상고법원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동료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지 않고 있고, 그러한 태도는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차라리, 같은 울산 출신으로서 법원과도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춘석 위원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적정함

☑ **상고허가제 설득 논리**

- ☞ 주요 외국 선진국들이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
- ☞ 최고 법원의 본래적 기능에 충실
- ☞ 정당한 권리자들에 대한 조속한 권리 확정 보장 등

2) 3. 2.(월) ‘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활용

■ 정책세미나 개요

- 추진목적
 - 상고법원안에 대한 찬반 논의를 벗어나,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하여 원점에서 다시 차분히 논의하는 자리
- 주제 ⇨ 상고심 제도 개선
 - 주제 1 : 각국 상고제도의 변천과 그 시사점 (이○○ 교수)
 - 주제 2 : 상고제도 개선 방안 (이○○ 변호사)



■ 정책세미나 자료집 중요성

- 그간 국회 내에서는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집이 하나의 전범(典範)으로 자리잡아, 반대세력들은 그 자료집에서의 반대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활용하고 있음
- 정책세미나 자료집도 마찬가지로 법사위 논의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므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책세미나에서 ‘상고허가제’ 도입 필요성 강조 필요

- 정책세미나의 추진 목적과 주제에 비추어, 상고허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적절한 자리인 것으로 보임
- 상고허가제로 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상고법원안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자리가 아닌, 한국형 상고허가제로서의 상고법원의 도입이 대안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끝>



상고법원 입법환경 중간상황 점검 (대외비)

2018. 7. 31.

사법정책실

1. 상황인식

가. 개요 ⇨ 엄중한 상황

- 1) 국회 - 법사위 국회의원 16명
- 2) 핵심 기관 - BH, 법무부, 여당
- 3) 주변 기관 - 변협, 언론, 진보그룹

나. 법사위 의원 16명

▣ 표면적 : 11명 찬성, 5명 반대 (※ 4명 반대 강고)

▣ 찬성 10명

- 여당 4명 (홍일표, 이병석, 정갑윤, 김재경)
 - 4선 이상 매주 화요일 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적절 이슈 있을 때 상고법원 발언 유도 (정갑윤, 이병석)
- 야당 6명 (이상민, 우윤근, 박지원, 이춘석, 서영교, 임내현)

▣ 소극 찬성 1명 - 노철래 (여당)

▣ 반대 5명

- 검찰 출신 여당 3명 (이한성, 김도읍, 김진태)
- 전해철 - 진보그룹 의식
- 서기호

다. BH

▣ 신중 내지 소극 분위기



▣ 정국 운영에 법원의 비협조 내지 부담 우려 상황

라. 법무부

▣ 외견상 신중 검토 ⇨ 실질적으로 강력 반대 그룹

- 검찰의 상대적 위상 하락 우려 ⇨ '질시' 감정 내재
- 일선 검사도 같은 기류여서 논리로 설득 어려움

▣ 표면적으로 정면 반대하던 영장실질심사제와는 다른 상황

- 법무부와는 표면상 직접 이해관계 無 ⇨ 정면 반대는 어려운 상황
- 4심제, 대법관증원론 등 반대를 위한 반대 ⇨ 대법관증원론이 현실화되면 다시 반대 가능성 有 ⇨ 변협과의 차이점

마. 변협

▣ 법원에 반감이 강한 청년변호사 그룹 지지로 당선

- 선명성 부각 ⇨ 법원 정책에는 무조건 반대 기류

▣ 대법관증원론 뒤 민변 핵심 존재 ⇨ 설득 쉽지 않은 상황

바. 언론

▣ 조·중·동, 매경 - 우호 내지 중립

▣ 한국 등 - 중립

▣ 한겨레 - 반대

▣ 경향 - 의견 표명 없었으나, 진보그룹 영향권 내

사. 진보그룹

▣ 민변 : 결사 반대 ⇨ 과거 고법 상고부 찬성과 모순

▣ 임○○ 교수

- 과거 : 고법 상고부 찬성 + 대법관증원론 반대론자



- 최근 : 결사 반대

▣ 기본 논리 : 전략적 · 정치적 스탠스

- 대법원 보수화 우려 ⇨ 대법원 정책 반대 ⇨ 대법관 증원 주장 ⇨ 증원 무산 시에도 '다양화' 명분 진보 대법관 확보 가능 ⇨ 보수화 견제
- 보수 · 진보의 대결구도의 전략적 접근 ⇨ 설득 어려운 상황
- 보수화된 대법원에서 전합 활성화 ⇨ 진보는 항상 소수 ⇨ 전합에 기대 無(통상임금 등) ⇨ 차라리 대법관 증원 시 일부 진입 가능 ⇨ 소부 중심 운영 시 진보 성향 소부 판결 유도 가능
- 독수리 5형제 시절 평가
 - 전합에서 사실상 모두 패배 but 시국 · 노동사건 등 소부에서 의미 있는 판결 있었음

아. 법원 내부 - 그룹별 상이

- 1) 법원장 - 큰 관심, 하○○ 당선 등 악재로 동력 약화 우려, 적극 지지
- 2) 고등부장 - 대부분 법원장과 유사
- 3) 지법부장 - 관심 낮음
- 4) 단독그룹 - 고등 배석, 고법 판사, 대법원 연구관 등 경험 기회 대폭 감소에 따라 상고법원 연구관 등에 관심 높음
- 5) 배석그룹 - 관심 및 이해도 편차 많음
- 6) 법원 내 진보그룹

▣ 금년은 CJ 4년차, 과거 동시기 위기 상황 발생

- 최○○ 전 대법원장 : 2003년 김○○ 대법관 제청 서명 파동
- 이○○ 전 대법원장 : 2009년 신○○ 대법관 문제

▣ 관망 분위기



- 대법관 증원은 반대
- 상고법원에 적극 찬성은 아님. 최선은 아니라는 의구심 존재
- 대법원장 권한이 더 세지고 관료화 강화에 대한 우려

▣ 현행 유지 곤란에 대한 인식 공유

- 대안은 제시 못하고 있는 상황
- 대법원이 강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추이를 보며 침묵

▣ 돌발 상황 발생 시 바로 목소리 낼 여지 있음

- 8월 대법관 제청 시 진보 대법관 희망 기류 ⇨ 보수로 갈 경우, 외부 진보 단체의 반발 강도와 연계하여 내부 목소리낼 소지 내재
- 후반기 법관인사 이원화 공론화 과정 ⇨ 고법부장 부활로 비칠 경우 명분 싸움 전개될 가능성 매우 큼

2. 입법전략

가. 개요

1) 기본방향

- ▣ BH 설득 찬성 ⇨ 법무부, 여당 찬성 유도
- ▣ 법무부 설득 ⇨ BH, 검찰 출신 의원 찬성 유도
- ▣ 국회 대책 ⇨ 키맨 5인방 관리

2) 외곽 관리

- ▣ 주변 그룹, 변협, 진보그룹 ⇨ 위험관리
- ▣ 메이저 언론 ⇨ 협조국면 유지 / 진보언론 ⇨ 관리

나. BH

1) 기조



■ BH 설득 ⇨ 찬성 ⇨ 법무부 찬성 유도 ⇨ 여당 당론 찬성 (최선)

■ BH 중립 / 당·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 (필수)

2) 방안

■ BH 주도 상황 ⇨ 가령 '국정과제위원회' 구성 등

- 사법제도 개선 결과물의 하나로 상고법원 설정 추진 동력 마련
 - 한계 : 시간 부족 + 논의 확장 시 사법개혁 전반 역풍 우려

■ 상고제도 개선 ⇨ BH 업적으로 위치 설정

- BH 설득 문제 - 참모 등 선행 설득 필요
- 김기춘 전 실장의 영향력 / 우병우 민정수석 등 친 검찰 성향
 - 참모 설득 쉽지 않은 상황

■ BH 관심 유발 연계 제안

- (예시) 대법관 개업제한 등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기희생 방안을 역제안 ⇨ 사법 현안의 근본을 해결하여 대중의 박수를 받고, BH 지도 제고로 연결될 수 있는 종합방안 제시

3) 협조 여건 조성

■ 상고법원은 정권·선거와 무관한 이슈

- 기본적으로 동력을 얻기 어려움 ⇨ 최소한 반대 목소리 잠재우기 필요

■ 전략적으로 법원이 재판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분위기 형성 필요

다. 법무부 ⇨ 빅딜 필요

■ 정서적 반대가 더 큰 문제 ⇨ 빅딜 없이 찬성·동의 유도 어려운 상황

■ 찬성 유도할 획기적 방안 발굴 제시

- 상고검찰청, 대법관/상고법관 일부 진입만으로 설득 불가
- 사법의 원칙을 지키면서 양보 가능한 현실적 방안 발굴이 어렵다는 문제



- 동의 - 협조 / 부동의 - 관계 단절 메시지
- 법무부 설득 시 역으로 BH 설득, 검찰 출신 의원 설득으로 연결 可

라. 여당

- 선거 전략 카드가 아니어서 여당 주도로 만들기는 쉽지 않음
-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 지속적 노력 필요

마. 국회

1) 여당 검찰 3인방

■ BH, 법무부 통한 설득

- 가장 큰 영향 可 but 현 상황에서 BH·법무부 설득이 쉽지 않음

■ 독자적 설득

- BH·법무부와 별도로 독자적 적극 설득 방안 필요
- 대표 등 선배·동료 의원 통한 설득 전략 고려
 - 의원들 최대 관심은 내년 ‘총선’
 - 의원 입법성과 지원 + 지역구 사법 관련 현안 발굴 제시
 - 계보 보스, 총선 영향력 있는 당대표 등 유력이사 통한 우회 설득
 - 직접 접촉 강화 대면 설득 ⇨ 적절 시점에 법원 지인 총동원
- 김진태 : 사법정책연구원 끝까지 혼자 반대, 여당에서 마지막까지 반대할 가능성 大 ⇨ 통과 침묵·묵인 유도
- 김도읍 : 검찰 출신, 부산, 최후의 반대 2인 유력, 당 지도부 영향력 크게 받을 가능성 有 ⇨ 통과 침묵·묵인 유도
- 이한성 : 하반기 간사. BH, 법무부, 당 지도부 영향력 크게 받을 가능성 ⇨ 소극 지지 또는 중립까지 유도

2) 야당 2명



■ **전해철** ⇨ **지지로 유도**

■ **서기호**

- 분리전략 + 정의당 통한 우회 설득 + 법원 내 지인 통한 우회 설득
- 전해철 유도 후 야당 7명이 서기호 설득 내지 동의 묵인 유도

3) **소결**

■ **5명 설득이 최대 관건**

■ **공교롭게 5명 모두 1소위 (나머지는 홍일표, 서영교, 임내현)**

■ **김재경 의원 1소위 영입 가능성?**

3. **전체 분석**

■ **대법원장님 4년차 - '상고법원' 어젠더에 총력을 모으는 상황**

- 상고법원은 '법원의 숙원사업 + 대법원장님 최대 역점사업'으로 위치 설정된 상태
- 상고법원 실패는 대법원장님 리더십 위기로 바로 연결
- 외부와의 전쟁 상황과 유사 ⇨ 결정적 순간에 법원이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

■ **금년을 넘기면 향후 수년 내 불가능**

- 대법원의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 + 정치적 공감대' 필요
- 해결 없이 봉합되면, 대법관 증원론에 힘이 실리는 역풍 상황 우려
- 금년 하반기 : 선거구 재획정이 최대 관심사, 개별 의원은 공천 등 총선 승리에 관심
- 내년 상반기 : 총선 체제로 관심은 선거에 집중
- 내년 하반기 : 조기 '대선' 국면 예상
 - 개헌 등 대형 정국이슈로 옮겨갈 가능성



- 선거결과에 따른 여야의 팽팽한 주도권 다툼 가능성

▣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모델로 삼아야 함

- 상고법원 도입 실패 ⇨ 상고허가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국민들의 기억에 '상고허가제'가 대안으로 잔상이 남도록 할 필요 있음



상고법원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내부소통 방안 검토

2018. 7. 31.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의 지지 여론 미흡 ⇨ 입법추동력 약화

- 상고법원에 대한 법관들의 열망과 지지는 법안 통과에 필수조건임
- 상당수 법관이 상고법원 추진에 무관심해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에서 법안에 반대하거나 통과가 어렵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법관 사이에 부정적·비관적 분위기 감지됨 ⇨ 법안 추진동력을 약화시키는 물론 외부에 알려질 경우 치명타가 될 수 있음

☑ 어느 법사위원의 전언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모 부장판사가 말하기를, 모든 판사들이 상고법원 설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판사들은 아예 그런 정책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

▣ 내부 소통 강화 필요성

-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부 외부 대응에 치중하면서 내부 소통 및 응집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던 측면이 있음
- 일선 법관들의 인식 현황 점검을 통한 문제점 발견 ⇨ 내부 소통 강화를 통한 관심도 제고, 이해 고양 및 오해 해소 ⇨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입법추진 동력 고취

▣ **對국회 및 對언론 전략과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 소통 방안 검토 필요**

- 시기·방법·효과면에서 국회 및 언론 대응전략과 연계되고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소통 방안 모색할 필요
- 내부 소통을 통해 일선 법관들도 상고법원 도입에 관하여 가치를 공유하고 결속력 강화 ⇨ 법원행정처뿐만 아니라 일선 법관들도 평



소 접촉하는 언론 및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상고법원 전도사 역할 ⇨ 강력한 입법추진 동력 확보

2. 내부 구성원 인식의 문제점

▣ 내부 인식 현황 파악방법

- 인터넷 법관 전용 익명게시판 및 서울고등을 비롯한 수도권 법원 일부 법관들의 익명 의견을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 확인

▣ 도입필요성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

- 과중한 상고사건 부담으로 인한 상고심 처리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해,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한 불만 고조 등에 비추어 상고제도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기본인식 결여

▣ 연혁적 문맥 및 추진 경위에 대한 오해

- 대부분의 법률선진국이 상고허가제를 두고 있는 취지, 우리나라에서의 과거 상고허가제 도입 무산 경위 및 상고법원안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장기간 숙의를 거쳐 나온 대안이라는 점을 모른 채 대법원의 업무 경감만을 위한 방안으로 오해

▣ 구체적 내용 및 장점에 대한 관심 및 정보 부족

- 젊은 법관, 지방근무 법관일수록 더욱 정보 부족하고, 관심도 낮음

▣ 사실심 충실화 방안과의 연계성 이해 결여

- 상호 무관한 별개의 제도로 이해

3. 내부 소통 강화 방안 검토

1) 주요 고려사항

▣ [1단계 목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한 이해 강화 및 오해 해소

- 무관심과 오해를 해소하고 정확한 이해를 통한 관심도 제고 및 법안에 대한 동의 분위기 확산



▣ [2단계 목표] 공감대 형성과 심정적 결속 강화 ⇨ 'one voice'

-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적극 지원과 동참 유도
 - 상고법원 도입이 단순히 상고사건 담당법원을 신설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 충실화 방안 및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과 같은 심급제도 개선방안과 결합되어 있는 재판 전반에 관한 중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재판의 이상인 충실과 신속을 달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이해 고양 ⇨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로서 당연히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가져야겠다는 몰입감과 일체감 부여 ⇨ 대외적으로 사법부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입장 현출
-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각 필요
 - 상고법원안의 좌절은 사법부의 위상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인식 필요

▣ [시기 선택] 對국회 일정 고려

- 법사위의 상고법원 공청회 4월 중순, 본회의 의결 6월 예상
 - 내부 소통의 효과를 입법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속 착수 필요함
 - 반면 4월 공청회까지는 법원행정처 주요 인력이 對국회 업무에 총력 투입되어야 하므로, 각급 법원 상대 행사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

2) 구체적 방안

▣ [방안①] 코트넷에 상고법원 커뮤니티 또는 게시판 개설

-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1단계 목표 달성 가능한 방안 ⇨ 법관의 댓글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1회성이 아닌 지속적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함

▣ [방안②] 각급 법원 법관 워크숍 및 판례연구회, 판사회의 등 활용

- 각급 법원에서 4~5월경 열리는 법관 워크숍이나 매월 열리는 판례연구회 및 실무연구회 등에서 상고법원을 주제로 삼아 발제·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 나아가 각급 법원 전체판사회의를 활용할 수도 있음. 단 충분한 정



보제공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논의할 경우 소수의 부정적·소극적 의견이 전체 분위기를 주도할 우려 있음

■ [방안3] 순회간담회 개최

- 충실한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대면 간담회에서의 스킨십과 피드백을 통하여 [2단계 목표]인 공감대 형성과 심정적 결속 강화에 도움
- 전자소송이나 법정녹음 제도 도입시 평심의관이 각급 법원 순회설명회를 해왔음은 물론, **2003년 공판중심주의 도입** 당시 차장님이 송무국장 및 심의관 수행하에 각급 법원 순회하며 형사법관 간담회를 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 조기 정착에 기여한 사례** 있음
- 단순한 '상고법원 법률안 홍보' 행사가 되지 않도록, 제1심 강화를 비롯한 **사실심 충실화 방안**,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을 비롯한 **심급 제도 개선방안 등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가치공유를 유도**할 필요 있음 ⇨ 판사로서 시작과 끝인 '**재판업무**'와 **직결되는 이슈**로 이해
- [간담회 형태 ①안] 고등법원 권역별 순회간담회
 - 5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개최하면서 고등법원 및 소재지 지방법원 법관은 모두 참석하고, 권역내 다른 법원 및 지원 소속 법관은 희망자 내지 대표자가 참석하는 방안 ⇨ 참석자들이 소속 법원에서 상고법원 논의에 관한 허브(HUB) 법관으로 소통 활성화 기대
 - [장점] 간담회에 참석할 행정처 간부들이 對국회 업무에 집중 투입되는 시기이므로, 최소한의 간담회를 통해 한정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단점] 권역내 법원에서 희망 법관만 참석할 경우 참여율 저조로 실질적인 소통 기능을 다하기 어렵고, 대표자가 참석할 경우 그 선발기준 및 대표성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 있음
- [간담회 형태 ②안] 각급 지방법원별 순회간담회
 - 각급 법원을 순회함으로써 소통 효과를 최대화하고, 상고법원 도입의 중요성을 법관들이 체감하는 분위기 조성



- 이 경우도 대상 법원에 소규모 지방법원인 춘천, 청주, 울산, 창원, 전주, 제주를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두 가지 방안 가능
- 장단점은 위 ①안과 반대로서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효율성을 장담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모든 일정 소화하기 어렵다는 한계 있음

● 검토 ⇨ ②안을 전국 법원 로드 쇼 형태로 시행

- 일부 법원만을 방문하기 보다는 로드 쇼(Road Show) 형태로 전국 모든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을 순회하면서 **사법부 내부의 관심도를 높이고, 결집 및 단속 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음
- 아직 對국회 접촉 세부 일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실제 순회간담회 시행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평의심관이 순회하며 설명회 형태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 가능함

● 구체적 일정 및 참석자

- 각 고등법원과 그 소재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을 하나로 묶어 개최한다면 총 19회 예상 ⇨ 6월 임시국회 전까지 완료하려면 약 9주간 매주 최소 2회씩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함
- 법사위의 4월 공청회 전까지는 행정처 실국장급 이상 간부의 지방 방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수도권지역 법원을 먼저 시행함이 효율적임
- 간담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차장님이 주관하고 실국장 및 평의심 의관 중 각 1인이 수행하는 방안이 적절함
- 간담회 전후로 해당 법원 법관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결합함으로써 홍보 및 관심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법관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 있음

■ [방안4] 그 밖의 내부 소통 및 boom up 방안

- 법원장 티타임, 소통토크 및 각급 법원 소식지 등 기존의 내부 소통 기회 적극 활용
- 일선 법관들은 상고법원 논의에 대한 접촉면 자체가 많지 않으므로, 일상적인 행사를 통해서 상고법원 논의를 자주 접하도록 할 필요 있음



-
- 법원장, 수석부장 및 선배 법관들이 상고법원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사소통에 나서야 함.
 - 사법연수원이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전국 법관 토론회, 나아가 법률가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하는 방법
 - 내부 구성원과의 폭넓은 소통방법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나, 토론회 결과가 '적극 찬성'으로 담보될 수 있다면,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對언론 홍보 수단 등으로 활용 여지 있음 ⇨ 각종 언론에의 기고 등과 결합하여 공청회 무렵 또는 본회의 무렵에 boom up 효과 기대. 끝.



주요 언론 접촉 결과 첩보보고

2015. 3. 30.

기획조정실

1. 접촉 대상

- 3. 30. 최유력 언론사 사회부 차장 2인, 법조전문기자 1인과 만찬

2. 언론 관심사항과 접촉 결과

- 산케이 지국장 형사사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적극 보도 의사

- BH 신임 비서실장 등 특별 관심 사건 ⇨ 사건의 쟁점이, 청와대 출입 여부 등에 관한 진실게임으로부터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언론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풍부한 논의로 발전되도록 재판 배경 설명함

- 상고법원안 통과에 대한 전반적 회의감

-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를 주변에서 참 많이 들었다'
- '국민 입장에서 별로 와 닿지 않을 것 같다'
- 김○○ 전 현재소장의 발언 언급
 - 최근 '대법원이 될 수도 없는 상고법원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조선 일보는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고 무엇하고 있느냐' 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함

- 한명숙 사건 상고심에 대한 처리 독촉

- 2013. 9. 30. 상고심 접수 (2013도11650) ⇨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한 오해 소지 언급
- 1심 무죄, 2심 유죄(징역 2년) 사건의 결론에 대하여 정치권 및 주요 언론의 여전한 관심



3. 對 언론론 착안사항

▣ 주요 관심 사건에 관한 언론 접촉 강화 필요성

- 산케이 지국장 사건 관련, 처음에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가, 상세한 설명으로 정확히 이해한 후 그 자리에서 보도 분량 및 논조 강화함
- 한명숙 사건 등 주요 관심 사건에 관하여 (결론이 아닌) 선고 예정 기일 등 사건진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언론의 상당한 호감 확보 가능

▣ 상고법원에 관한 설득 논리 홍보 강화 필요성

- ① 법안 발의 의원들의 무관심, ② 기자들 사이에서의 무관심, ③ 일반 국민의 무관심을 두루 언급 ⇨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서부터 ‘상고법원의 효율·당위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 홍보 강화 필요
- 전직 대법관의 반대 발언은 상고법원 추진에 치명타가 될 수 있으므로, 전직 대법관들 상대 설득 강화 및 적극적 찬성자로 언론 기고 등에 활용할 필요성 있음. 끝.



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추진동력 확보방안 검토

2018. 7. 31.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은 VIP의 몫 ⇨ **BH의 입법 협조 획득이 절대적**
 - 국회 법사위 야당 내 친민변 성향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 극복 위해서는 여당 의원의 전폭 지지 要
 - 그러나 검찰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법사위 여당 분위기도 대체로 非우호적 ⇨ BH 영향력 발휘 절실
- 하지만 BH 내 **견제 · 반대 분위기에 큰 변화 없음**
 - 전임 비서실장 영향에 따른 부정적 분위기 고착되어 있고, VIP 핵심 보좌진의 親검찰 구성의 틀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
 - BH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설득 방안 검토하고 있으나, BH 관심 유발에 성공하기 전에는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국면 자체를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 카드 검토가 필요**
 - 발상의 전환 필요 ⇨ BH를 단순한 '설득의 客體'가 아닌 '입법 추진의 主體'로 끌어들이 수 있는 적극적 전략 개발 필요
 - 다만, 그로 인한 악영향 · 문제점 등에 관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요함
 - 아울러 수용가능한 대안 제시 방안에 관하여도 검토 필요
 - 상고법원 설치안 외에 BH 설득이 가능한 수정안 미리 구상 ⇨ BH에게 제시하여 BH가 입법 의견 내도록 유도



2. BH 현황 분석

■ 집권 1~2년차 ⇨ 가시적인 성과업적을 거의 도출하지 못하였음

- 집권 1년차의 인사 난맥상, 집권 2년차의 세월호 사고, 비선 실세 논란 등 ⇨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

■ 집권 3년차 ⇨ 불안감·절박감 속에 가시적 성과를 쌓기 위한 '골든 타임' 선언

- 올해는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에 해당함
 - 전국 단위 선거가 없음 ⇨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총선과 대선으로 인한 정치 이슈에 매몰될 수밖에 없음
 - 내년부터는 집권 4년차로서 레임덕 시작 ⇨ 올해 초 비선 실세 논란 등으로 인하여 조기 레임덕 가능성마저 제기된 바 있음
- 뚜렷한 '집권 3년차 아젠다' 발굴을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임
 - 최근 공언한 '부정부패와 전면전' 도 같은 맥락의 적극적 아이템으로 보는 시각 우세

☑ 3. 12. 이완구 총리 '부정부패와 전면전' 대국민담화 발표

"저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 내겠습니다."

■ 두 가지 화두 ⇨ '경제'와 '통일'

- [경제] ⇨ 각종 정치 이슈를 잠재우고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 준비를 위한 목적
 - 이른바 '경제위기론' ⇨ 개헌론 등 소모적인 정쟁 요소를 압살하는 한편, 레임덕의 시작 시기를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전통적 방법
 - 또한 역대 정권의 성패는 임기 말의 각종 경제지표에 따라 평가됨되었고, 정권 재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



☑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 ▶ 2014. 1. 발표 ⇨ ※'두 달 만에 급조된 계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①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②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 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③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

● [통일] ⇨ 총선·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 목적

- 內治에서의 실책을, 다소 추상적이고 이벤트 성격이 강한 外治, 특히 통일 분야에서 만회하려는 목적
- 특히 '통일대박론'이라는 프레임 선점은 진보층 공약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오히려 북한 지도층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어 긴장감 조성을 통한 보수층 결집에도 상당히 유효한 다목적 카드임

3. 추진 방향 개요

▣ BH가 주도하여 정권의 성과업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상고법원안을 포함시켜 함께 추진함

-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물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함
 - 단기간 내 추진을 위해서는, 명료하면서도 타 기관과의 이해관계 상충 등 장애 요소가 적은 아이템이어야 함
 - 사법부 자체적인 연구·검토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함

▣ BH의 관심을 유도할만한 내용이면서 사법부에 우호적인 내용으로 구성함

- 관심 유도 ⇨ 최대 현안인 경제 관련 아이템이 적당함

☑ 경제와 사법의 관계

- ▶ 한 국가의 법치주의 실현과 GDP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있음 ⇨ 이코노미스트誌에 실린 우측 그래프는 이를 나타내는 것임
- ▶ 2007년도 KDI 보고서 ⇨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순위의 법질



서만 확보되어도 GDP가 1% 추가 성장한다'라는 분석

- ▶ 세계은행 발간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 분쟁 해결[Enforcing Contract] 부문이 주요 평가 요소 중 하나[대한민국 사법부 3년 연속 2위 차지]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직접 추진하도록 하여 강한 추진력을 갖도록 함**

- BH가 '설득의 客體'가 아니라 '입법 추진의 主體'가 되도록 함
 - 그러자면 BH가 주도할만한 큰 그림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함
- 역대 정부에서 설치되었던 사법개혁 논의 기구들을 참고할만함

☑ 역대 정부 사법개혁 논의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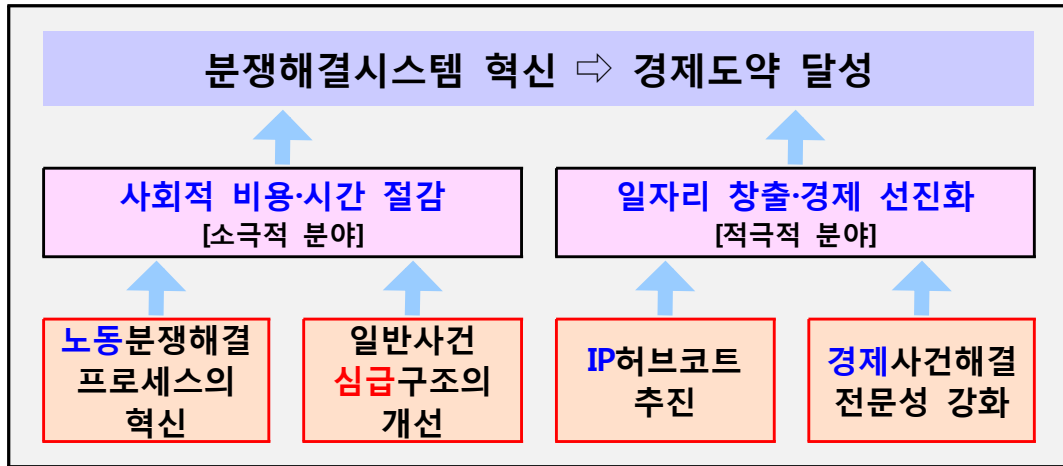
- ▶ 문민정부 ⇨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발전위원회[사발위], 국무총리 산하 세계화 추진위원회[세추위]
- ▶ 국민의정부 ⇨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
- ▶ 참여정부 ⇨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사개추위]
- ▶ MB정부 ⇨ 국회 소속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4. 구체적 방안

가. 정책 타이틀 ⇨ 가칭 **'경제도약과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분쟁해결시스템 혁신'**

- ▣ '경제도약'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그 선결 과제이자 우리나라의 고질적 폐해인 '사회갈등해소'를 2차 아젠다로 제시
- ▣ '반성적'인 '개혁(reformation)'이 아닌 '창조적'인 '혁신(innovation)'으로 네이밍
 - '혁신'은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사용된 워딩이기도 함

나. 논의 주제



1) 선정 기준

■ ① BH의 국가정책 지향점과 부합하는 주제

- VIP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4대 부문 구조개혁 ⇨ 공공, 노동, 금융, 교육

■ ② 단기간(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 무리가 없는 주제

■ ③ 사법부 자체적인 검토·준비가 마무리되어 있는 주제

■ ④ 외국의 성공사례 등으로 설득력 뒷받침할 수 있는 주제

2) 노동분쟁해결 프로세스의 혁신 ⇨ 노동분쟁 전문가참여제(참심제) 도입

■ 혁신 필요성

- 노사갈등의 폐해 심각 ⇨ 막대한 사회적 손실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약의 발목을 잡는 주된 원인
 -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 선진국 진입 위해 극복해야 할 마지막 사회적 장애요소



☑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 (삼성경제연구소 2013년 연구결과)

- ▶ 한국의 갈등지수, 종교분쟁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2번째로 높음
- ▶ [원인] 지역간, 노사간, 이념간 갈등 관리 실패
- ▶ 갈등지수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개선 시
⇒ 1인당 GDP 최대 21% 증가

- 노동분쟁이 격렬한 대립양상으로 흘러 자주적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노사간 All or Nothing 논리로 맞섬
- 근로형태의 다각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고용에 있어서 양성평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관계에서 분쟁이슈 더욱 복잡·첨예·다양해질 것임
- 현재의 노동위원회나 일반 법원에서의 분쟁해결구조로는 대처하는데 한계
 - 노동위원회가 개별적 노사분쟁까지 처리하고 있으나, 사실상 5심제(지노위+중노위+3심 소송)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그치지 않고 있음
 - 일반 법원의 노동사건 처리에 대하여도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 有
⇒ 노동분쟁의 새로운 평화적 해결시스템 구축 긴요한 시점

■ **혁신 개요**

- 개별적 노동분쟁의 화해적 종결을 위한 분쟁처리시스템 新구축 ⇒ 노동분쟁 전문가참여제(참심제) 도입
 - [담당 사건] 해고, 임금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건
 - [사건처리 주체] 노동심판위원회 ⇒ 직업법관 1명과 노사관계업무경험 풍부한 노동심판원 2명(사용자측 1명, 노동자측 1명)으로 노동심판위원회 구성
 - (1안)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국무총리 산하 독립된 분쟁처리위원회로 구성



⇒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의 **개별적 근로관계분쟁**에 대한 심판기능
흡수

- (2안) 법원 내 설치 ⇒ 제도 도입 초기에는 **노동위원회** 판정 기능 유지하여, 노동분쟁 당사자들에게 **절차 선택권** 부여

- [신속한 분쟁해결] 원칙적으로 **3회 기일** 이내에 노동심판사건 종국 처리

- [사건처리 프로세스]

- 일단 조정 시도 ⇒ 실패 시 심판 ⇒ 불복 시 소송으로 이행

- 비송사건으로 분류하여, 법리적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분쟁 실상에 적합한 결론 제시

- [기대효과] 노동분쟁처리의 전문성·중립성 제고 + 자주적인 분쟁해결절차 마련 ⇒ 단순한 사건 종결을 넘어선 분쟁의 신속·근원적 해결 ⇒ 노사분쟁에 얽여 있는 유·무형의 사회갈등 해소 ⇒ 경제발전의 동력 확보

- 전문법원인 노동법원 설치하는 방안에 비해, 단기간 내 큰 비용 투입 없이 도입 가능

- 과거 사개위에서 추진한 노동법원 설치 방안에 대하여, 별도 법원 설립에 대한 부담, 노동위원회 존립과 직결되어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부정론 제기된 바 있음

▣ 일본의 노동참심제 성공사례

☑ 2004년 내각 주도로 참심형 노동심판제도 도입 ⇒ 2006년 4월부터 시행

▶ 로스쿨 제도, 재판원 제도 등과 함께 **사법제도개혁 일환**으로 **내각이 추진**

▶ [개혁 배경]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로 도산기업 속출하면서 노동분쟁 급증하자, 내각 후생노동성의 분쟁해결기능 한계 봉착 ⇒ **신속성·전문성 갖춘 노동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작업 착수**

▶ [성과] 2006. 4.부터 2009. 9.까지 동경지재 노동심판사건 중 약 **78%**가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고 **종국됨** (조정성립율은 **71.8%**)

▶ [평가] 기존의 노사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획기적 변혁**이자, 일본 **사법개혁** 중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소개되고 있음



3) 세계특허(IP)허브법원 추진

▣ 혁신 필요성

- 종래의 산업 발전 모델의 한계를 극복한, IP와 사법서비스 결합을 통한 국가 新성장 모델 제시
 -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4위 내에 드는 **특허 강국**의 장점 활용
 - 창조경제의 기반인 **IT 기술**을 **핵심**으로 新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법인프라** 구축
- 일본의 폐쇄성, 중국의 후진성과 비교되는 **대한민국의 개방성, 우수성**을 바탕으로 **선도자**로서 **행보** 착수

▣ 혁신 개요

- [단기적] 특허법원에 국제부를 설치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대외적 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역량 강화** ⇨ **글로벌 IP소송의 선호** 법정지로 자리 잡음
- [중극적] 아시아 특허분쟁 해결기구 대한민국 설치

4) 경제사건해결 전문성 강화 ⇨ 선진 **국제중재기구** 및 **경제 전문법원** 신설

▣ 혁신 필요성

- [선진 국제중재기구 신설] 국제중재사건 유치에 따른 경제적 수익창출 효과 至大

☑ 국제중재 활성화의 경제가치

- ▶ 중재사건 1건 유치 ⇨ **25억원**의 경제가치
 - 향후 5년간 매년 50건씩 유치 ⇨ **6,250억원** 수익
- ▶ 2013년 한국기업 국제중재분쟁금액 약 20조원
 - 중견급 이상 기업, 해외거래 분쟁의 **90% 이상** 국제중재로 해결



- 국제중재의 무게중심,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 중

- 지난 100여년간 영미법계 국가, 특히 영국의 전유물이었던 국제중재의 문호가 아시아 국가들에게 급격히 개방되고 있음
- ex) 세계 2위 국제중재기구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 최근 7년 사이, 인도·두바이·서울에 지부 설립

- 우리나라의 유리한 지정학적 여건 활용

- 미국과 중국, 미국과 일본간 거래에서 제3의 중립국 지위
- ⇨ 경쟁력 갖춘 국제중재기구 설립하여 블루오션인 아시아 국제중재시장 개척에 나서야 할 적기
- [경제 전문법원 설립] 경제분쟁해결의 전문성·효율성·예측가능성 강화 ⇨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에 필요한 전제조건 구비
- 상법과 기업적 법률관계의 특수성·독자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 역동적 기업 활동을 유인하는 법적 안정망 확보
- 現 도산제도 및 도산분쟁해결시스템의 도약 모색 ⇨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여 도산법체계 세계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단계

세계은행의 도산 제도 평가

- ▶ 세계은행 발간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는 국가별로 매년 도산 제도 부문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있음 ⇨ 'Doing Business 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 환경은 187개국 중 분쟁 해결[Enforcing contract] 부문 2위, 도산 제도 [Resolving Insolvency] 부문 15위, 종합 부문 7위로 평가되었음

혁신 개요

● ①국제중재센터 설립

조직

- ▶ [1안-정부주도형] 인천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국제중재센터 설치
-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혜택 등 우월한 입지 활용
- 대한상사중재원의 지부 또는 경제자유구역청 산하 기구로 설치
- 법원의 중재절차에 대한 개입 자제



▶ [2안-법원연계형] 조정센터와 유사한 형태의 국제상사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재센터 설립

- 법원에 의한 신속한 긴급중재절차 운영
- 센터와 법원의 밀접한 업무협력체계 구축 ⇨ 중재판정의 취소·집행의 통일적 기준 확립
- 경제 전문법원 산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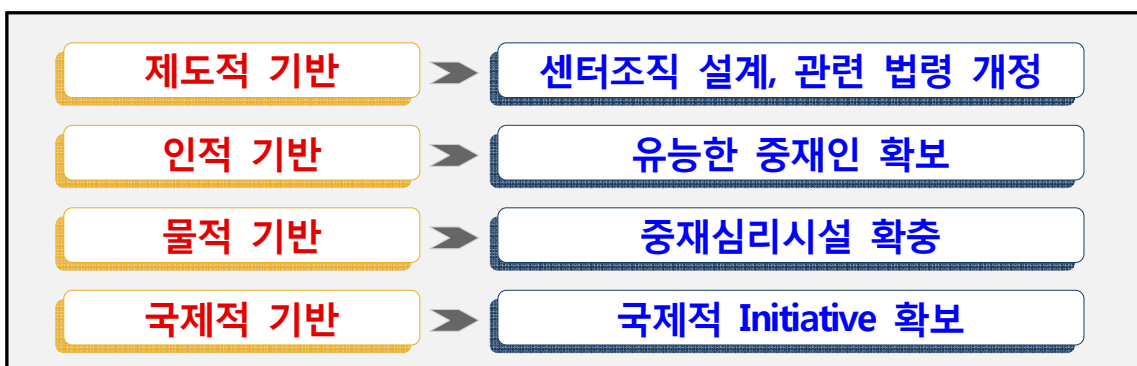
- 전문성·신속성·탄력성 갖춘 중재절차 마련

-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자율적 선택권 강화
- 중재절차의 국제적 기준 도입 ⇨ ①사전 일정 수립, ②집중 심리, ③구두변론 등
- 신속 중재절차 신설 ⇨ 청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모든 절차기한 단축하여 6개월 이내 중재 완료
- 긴급 중재절차 마련 ⇨ 중재판정부 구성을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사정 있는 경우, 긴급중재인 선임하여 긴급중재판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재언어 ⇨ 영어로 지정

- 인적·물적 기반 확충

- 전문성 갖춘 유능한 중재인 확보 ⇨ 중재인 수당의 현실화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편리한 중재심리시설 구비

⇨ 향후 5년 이내에 아태 지역 국제중재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제중재 활성화 플랜 수립





● ② 독립된 경제 전문법원 설치

- ①상행위·상거래 관련 분쟁 처리하는 상사부, ②법인 및 개인도산사건 처리하는 파산부로 구성
- 상사부 일부 사건에 대하여 직업법관 1명과 경영·회계 등 전문가 2명이 함께 심리·판정하는 전문가참여형 재판제도 도입 검토
- 일정 소가 이하의 상사 사건에 대하여는 단심제 처리 검토
- 현재 법원 파산부의 사건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산법관 및 도산절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도산절차의 통일성 확보
-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청, 캠코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시스템 구축
⇒ 경제 전문법원의 '재기지원 허브' 역할 확립
- 재정위기 및 경제 문제에 대한 실질적 문제해결법원(Problem solving courts)으로 기능

- [기대효과] 경제분쟁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이용율 제고 + 상사·도산법제 등에 대한 국가적 신뢰도 상승 ⇒ 기업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로 투자창출 효과 기대

■ 외국의 성공사례

●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 아시아 최고의 국제중재기구로 자리잡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 ▶ 1991년 '지적산업 허브화' 정책 일환으로 설립하여 최근 아시아 최고 자리 획득
- ▶ [성공 요인] 다국적 기업본부 유치, 신속한 절차진행, 중재판정 취소 등 법률상 불허, 산하에 중재법원 설치·운영 등
- ▶ 2010년 실시 '세계중재기관 선호도 조사'에서 아시아 중재기구로 유일하게 선호 기구로 선정
- ▶ 2013년 중재가액 48억 달러



- 미국 파산법원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미국 파산법원

- ▶ 미국 도산 법제의 발전은 창업과 실패, 재기를 통해 **미국을 역동적인 기업과 혁신의 나라로 만드는데 일조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 특히 미국 파산법원은 **금융 위기 당시** 주요 회생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금융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고, 그 덕분에 **미국이 유럽보다 경제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다고 함** ⇨ **Obama 정부의 큰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5) 일반사건 심급구조의 개선

■ 혁신 필요성

- 소송건수 및 상소율의 지속적 증가 ⇨ **재판기간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
- 상고사건 적체로 인해 대법원의 제대로 된 **법선언 및 분쟁해결기능** 수행에 **한계점 압박** ⇨ **최고법원의 기능 저하는 필연적으로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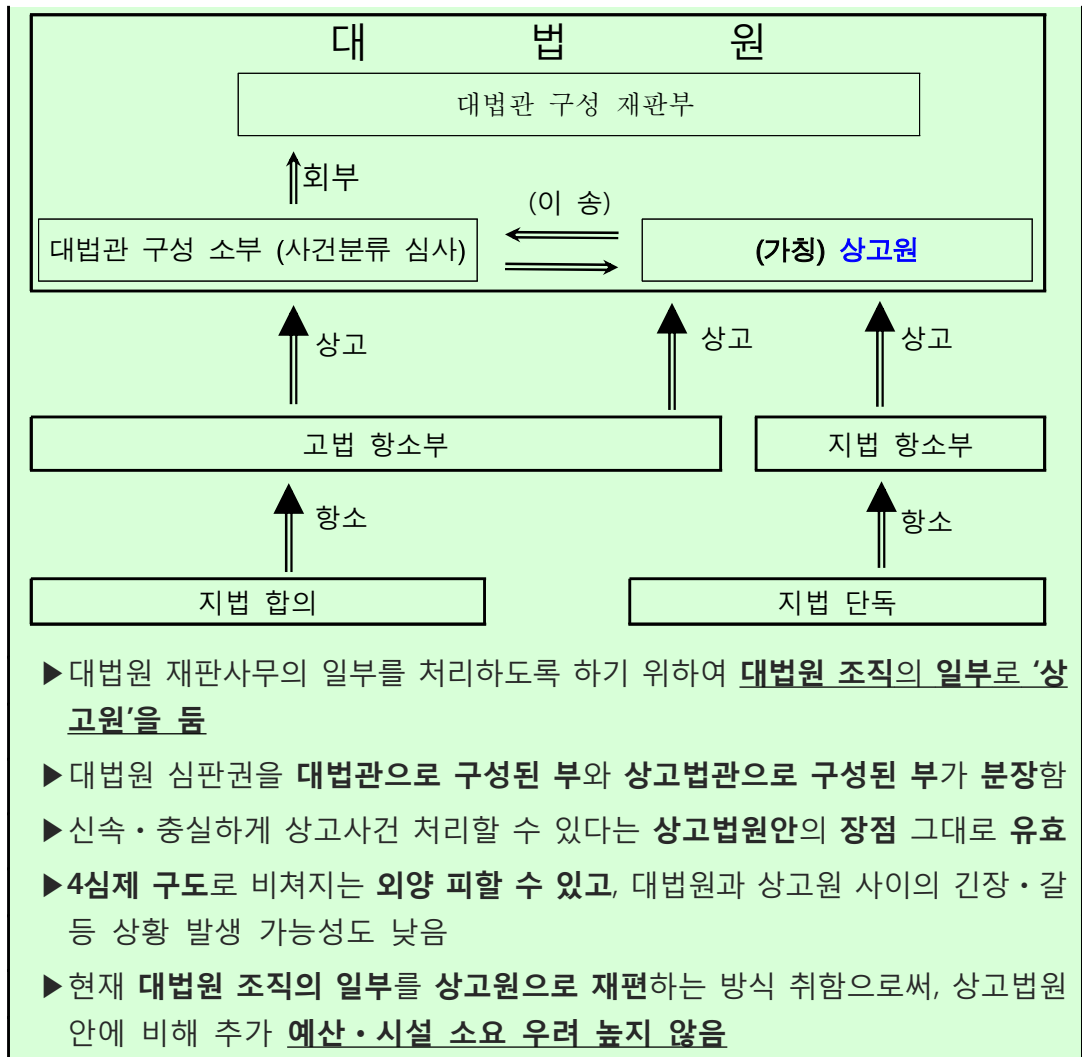
■ 혁신 개요

- ① 사실심 충실화 ⇨ 상소율 하락 ⇨ 총 재판기간 단축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심층 검토
- ② 상고제도의 개선

[원안] 상고법원 설치

- ▶ 대법원의 정책법원化 + 상고법원에서의 **개별적 권리구제 기능 강화**
- ▶ **신속·충실한 상고사건 처리**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대안] (가칭) 상고원 설치



다. 추진 전략

- [1단계] **신임 비서실장 및 특보단 개별 접촉** ⇨ 우호적 분위기로 전환
 - 신임 비서실장의 유연한 업무스타일, 민정특보·정무특보의 VIP에 대한 영향력 활용
 - '경제도약과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분쟁해결시스템 혁신'의 **특보단 회의 상정** ⇨ VIP 긍정적 인식 형성 시도
 - 상세한 접촉전략은 3. 27.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참조
- [2단계] **CJ께서 VIP와의 개별 면담 추진**



- '경제도약과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분쟁해결시스템 혁신'이 VIP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공공부문 개혁'의 추진체가 될 것 강조
 - 아울러, 심급제도의 개선 등 사법부의 최대 당면 과제에 대한 협조 강력히 요청 ⇨ 정책 추진 실패는 사법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하여 중국에는 국가의 대외적 위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변
 - 심급제도의 개선 방안 중 상고법원안 외에도 (가칭) 상고원 설치, 상고법관에 대한 VIP 임명권 강화 방안 등 대안 수용 가능하다고 설득
 - BH가 부담 없이 법무부를 통해 수정안을 내놓도록 유도 ⇨ 사법부가 이를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형식으로 입법 성사시키는 것이 이상적
 - 정부 주도 입법으로 추진함으로써, 의원 입법 형식에 따른 그간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음
- [3단계] '경제도약과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분쟁해결시스템 혁신' 가동
- 주체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 '분쟁해결시스템혁신위원회'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추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형식의 논의 기구를 설치하여 구체적 추진 방안 논의
 -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실무지원단으로 구성
 - 위원 ⇨ 법원, 법무부, 변호사단체, 법학교수, 행정부, 시민단체, 언론계, 국회, 헌법재판소,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등의 인사를 총망라함
 - 간사 ⇨ 청와대(법무비서관실)와 법원의 인사가 맡아 주도하도록 함
 - 추진 기간 ⇨ 약 6개월[연내 최종 결론 도출]
 - 특히 상고법원 설치 방안의 경우 이른 단계[두 번째 안건 정도]에 논의 ⇨ 결론 도출 후 곧바로 입법 추진 시도



5. 추가 검토 사항

■ ①BH의 관심 유도 문제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고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임을 강력하게 설득하여야 함
- 노동분쟁 전문가참여제(참심제) 도입, IP허브코트 추진 등은 우리나라의 現 사회적, 경제적 실정에 적합한 신선하고 적시성 있는 쏠국가적 아젠다가 충분히 될 수 있음
 - 일본의 참심형 노동심판제도 등 정부 주도형 사법제도 혁신 사례가 존재하고, 미국의 파산법원과 같은 건강한 분쟁해결시스템이 경제발전의 기초체력이 된다는 성공 사례를 강하게 어필하여야 함

■ ②추진의 효율 문제

- [우려①] 다른 아이템들과 패키지 형태로 추진할 경우 전체적으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내년 초 총선으로 인하여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회 상황을 장담하기 어려움
- [우려②] 과거의 사법 개혁 논의 기구의 예를 살펴볼 때 대통령·국무총리·국회가 주도한 경우는 논란과 갈등만 초래하였을 뿐 큰 성과가 없었음

☑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과거의 사법 개혁 논의 기구

▶ 1993년 문민정부의 사법제도발전위원회[사발위]와 2003년 참여정부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 모두 법원이 주도한 경우에 해당함

- [반론] 이 방안 외에 마땅한 국면 전환 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추진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비교·감안하여야 함

■ ③추진 방향의 왜곡 문제

- [우려] 외부 인사에게 주도권을 넘기게 되므로 추진 방향이 왜곡되



거나, 의도와 다르게 사법 개혁 논의로 확산될 수 있음

☑ (실례) MB정부의 사법 개혁 논의

▶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을 목표로 출발하였다가, 사법부 개혁으로 표적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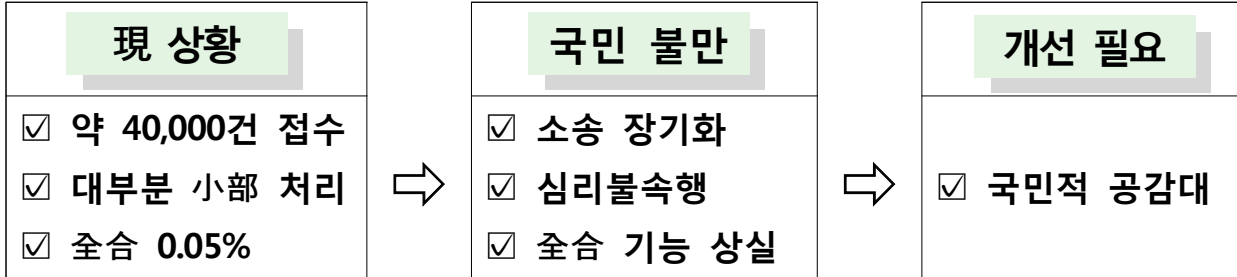
- ex. 상고법원안 대신 대법관 증원론 추진으로 결론 도출 또는 전면적인 사법 개혁이 논의 대상에 포함
- 특히 BH 핵심 보좌 라인이 親검찰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방향을 왜곡시킬 위험성은 상당함
- [반론] 논의 주제 자체를 앞서 언급한 항목에만 적극적으로 한정하면 됨, 또한 BH도 政爭과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분야로 논의를 확산시키기를 원하지 않을 것임
- 법무부·검찰에서도 자칫 검찰 개혁으로 논쟁이 확대되는 것은 원치 않음
- 타이틀 네이밍 등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4법원의 경제 사안에 관한 지나친 개입·편향성 지적 문제

- [우려] 법원이 경제 문제에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한다는 입장을 주게 되면 향후 경제 관련 사건 처리 시에 지속적으로 부담으로 남게 될 수 있음
-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재판에 대한 공정성·독립성도 논쟁에 오르내릴 수 있을 것임
- 특히 진보 성향의 언론기관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강해질 것임
- [반론] 공식적·외형적으로는 BH 주도로 포장·강조하고 법원은 가급적 전면에 나서지 않도록 함. 끝.

상고제도 개선 방안

■ 개선 필요성



■ 주요 방안

사건 수 감축	인력 추가	인력 추가				
상고허가제	상고법원안	대법관 증원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글로벌 스탠다드 (美·英·獨·日)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과거 실패 경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민 정서 反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입 가능성 少	대법관이 전부 심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헌법상 소수 예정 (국회 동의: 대법원 외 3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보세력 진입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사청문회 (38명안: 평균 2月 1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 증원 不可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大法院</td> <td style="text-align: center;">上告法院</td> </tr> <tr> <td>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요사건 전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송 강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혼란 방지 </td> <td>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별 분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속·충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문화 </td> </tr> </table>	大法院	上告法院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요사건 전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송 강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혼란 방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별 분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속·충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문화	
大法院	上告法院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요사건 전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송 강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혼란 방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별 분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속·충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문화					

■ 민주적 정당성 확보

형식적 정당성	실질적 정당성			
上告法院	大法院		上告法院	
임명 방식	全員合議體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대법관 심사	경륜 있는 법관
입법 재량 사항	사회적 공론화		신속·충실 해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추천위원회 마련 (검증절차 강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성절차 참여 (정부·국회 관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요사건 전담 (※ 언론보도사건: 170건 포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해석통일 필요 사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적 대법원 사건 (범위: 입법·정책결정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 분쟁 전담 (일반사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활법률 사건 (폭행, 임대차보증금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심리불속행 폐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문부 설치	



대한변협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2015. 4. 17.

기획조정실

1. 방향

■ 대한변협 '회장' 개인에 대한 '고립' 전략

- 대한변협 회장 개인을 대한변협 구성원과 지방변회로부터 고립시켜야 함

■ 기본 컨셉

- 대법원은 전체 변호사를 존중한다는 이미지
- 대한변협 회장은 법률가로서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돌출행동 중
⇒ 장기적으로는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킬 것임
 - 하○○ 회장의 정치 성향 ⇒ 민변 등 진보 성향 변호사들은 이미 반대
 - 핵심 ⇒ 중도, 보수 성향 변호사들에게 하○○ 회장의 부정적 이미지 전파
 - 위법행위, 포퓰리즘, 정계 진출 야망, 사리사욕 추구(서울변회 회장 지위 이용 사건 과다 수입, 변호사 사무실 건물 소유자, 서울변회 재정 파탄)
 - 언론 “꿈 많은 돈키호테” ⇒ 사리사욕 추구 이중적 이미지 부각 필요
 - 미국 변호사협회(ABA)의 사법부 존중 사례(미국 연방판사들의 보수 인상 및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서면을 하원의장에게 발송한 사례 등) 부각

■ 압박 수단 활용 시 유의할 점

- 압박 수단의 장·단점 및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사법부 위신에 손상을 주거나 역공의 우려가 있는 방안은 부적절
 - ‘전체’ 변호사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부적절
 - 국민들이나 제3의 기관에 피해 또는 반발을 살 수 있는 방안은 부적절



2.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

1) 대한변협과의 간담회 개최 중단

■ **현황**

- 1996. 6. 제1차 간담회 개최 후 2014년까지 총 26회에 걸쳐 간담회 개최
- 올해는 대법원에서 간담회 개최 제안할 차례

■ **시행 방안**

- 대한변협에 간담회 개최 제안하지 않음

■ **효과**

- 대법원-대한변협 간담회 ⇨ 대한변협 입장에서는 범조삼륜의 한 축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대한변협과의 간담회 개최 중단으로 상당한 압박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예상되는 부작용도 적음

3. 추가 검토 필요한 방안

1) 대한변협 주관 변호사연수 법관 출강 중단

■ **현황**

- 대한변협 주관 각종 연수에 법관들 활발하게 출강 중
 - (예) ‘의료법’ 특별연수 (2015. 3. 28. 실시)
⇨ 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 재판연구원, 김○○ 서울고법 판사
 - (예) ‘가사법’ 특별연수 (2014. 5. 10. 실시)
⇨ 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최○○ 서울가정법원 판사

☑ 변호사 의무 연수

▶ 연수주기 : 현재 제5주기 ⇨ 2015. 1. 1. ~ 2016. 12. 31.



▶ 연수시간 : 전문연수 12시간, 윤리연수 1시간

☑ 대한변협 주관 변호사 연수

- ▶ 일반연수: 변호사 전원 대상, 연2회[하계(변호사 대회) 및 동계] 실시
- ▶ 특별연수: 희망하는 변호사 대상, 연중 수시 실시
 - 예) 2014년도 주요판례해설 특별연수, 행정쟁송 특별연수 등
- ▶ 온라인연수: 140여개 온라인 강좌 운영 중(e.koreanbar.or.kr)

☑ 지방변회에서 실시하는 위임연수

- ▶ 대한변협에서 위임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특별연수

■ 시행 방안

● [1안]

- 대한변협의 경우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등법원 전문재판부 소속 법관들의 출장을 원함 ⇨ 출장 현황 파악 후 출장 예상되는 재판연구관, 법관들에게 출장 자제해 달라는 의사 간접적으로 전달

● [2안]

- 외부 강의는 원칙적으로 소속 법원장 신고 대상
[예외] 월 3회, 월 6시간 초과, 2개월 이상 ⇨ 대법원장 허가 대상
- 전국 법원장에게 소속 법관들이 ‘대한변협 주관 변호사 연수’에 출장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메일 발송

■ 유의사항

- ‘대한변협 주관 변호사 연수’와 ‘지방변회 주관 위임연수’ 구별 필요
 - ⇨ ‘대한변협 주관 변호사 연수’에만 법관 출장 중단
 - ⇨ ‘서울변회 등 지방변회 주관 위임연수’에는 법관 출장 계속 허용

■ 효과

- [긍정적] 법관 출장 중단으로 강력한 압박 효과 기대됨
 - 변호사 연수에서 법관들의 출장 비중 상당함



- 로스쿨 출신 변호사 ⇨ ‘법관’들로부터 법원실무교육 받고 싶은 욕구 강함

● [부정적]

- 출강 제한 조치에 대하여 출강 원하는 ‘법관’들의 반발 심리 우려됨
- 법원이 대한변협과의 갈등으로 변호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공적 책무를 포기한다는 외부 비판을 받을 우려

2) 변호사대회(8월 개최 예정) 불참 (대한변협 주최 행사 전면 불참)

■ 현황

- 대한변협 매년 8월 말 변호사대회 개최 (대한변협의 가장 큰 행사)
- 대법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심

■ 시행 방안

- [1안] 대법원장님 불참
- [2안] 대법원장님께서 참석은 하시되, 축사에서 경고 메시지 전달
- 검토의견 ⇨ [1안]
- [2안]은 불필요한 논쟁으로 대한변협의 존재감만 부각시키게 될 우려

■ 효과

- [긍정적] 대한변협의 연중 가장 큰 행사 ⇨ 강력한 타격
- [부정적]
- 대법원-대한변협 갈등 부각 ⇨ 대한변협의 존재감 부각
-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등 다른 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데, 대법원장님만 참석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는 외부 비판 받을 우려

3) 변호사 평가제 시범 실시 계획 유포

■ 현황

- 2014. 9.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주도로 변호사 평가제도 TFT 구성하여 2주간 3차례 회의 실시 ⇨ ① 변호사 평가제도 시행 필요성, ② 변호사 평가제도의 전략적·단계적 시행 방안 심층 검토
- 변호사 평가제도 TFT 활동으로, ① 변호사 평가제도 도입의 당위성, ② 구체적 시행 방안(평가 주체, 시기, 방법, 절차 등), ③ 추진 로드맵에 대한 검토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
- 그러나 ① 상고법원 입법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 ② 법관평가 관련 갈등 재연의 우려 등으로 시범실시 보류하였음
- **2015. 3. 2. 중앙일보 박○○ 기자 ‘변호사 평가제 도입’ 주장 칼럼 게재**

☑ 중앙일보 박○○ 기자 (대한변협신문 법조기자실 칼럼)

정말 궁금한 것은 왜 변호사 평가는 도입을 안 하는지 입니다. 법관평가도 수년간 잘 진행해서 정착됐고 검사평가도 이제 도입하신다고 하는데 왜 변호사 평가는 아무도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요. 국민 입장에서서는 재판 받을때 법관을 선택할 수도 검사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정보를 제공할 방법을 변호사단체에서 고민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법관평가하듯이 설문조사식으로 변호사를 평가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 **시행방안**

- 중앙일보 박○○ 기자 등 이용 ⇨ 법원이 변호사 평가제 도입 검토 중 이라는 기사를 내보냄
- 검토 중인 이유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
 - 법조일원화 하에서 법관임용을 위한 심사 자료 수집
 - 변호사의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증진 및 전체 사법 발전에 기여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변론 능력 우수한 변호사 파악)
- 일단 긴장감 조성 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 수위 결정



- 전체 변호사를 적으로 돌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됨

▣ **유의사항**

- 서울변회 등 지방변회와의 관계 유지에 유의

4) 대한변협 법률구조 예산 지원 중단

▣ **현황**

- 재단법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 목○○, 이사 양○○ 등)
- 공탁출연금 지원 규모
 - 2015년 2억 원, 2014년 5억 원, 2013년 5억 원

▣ **시행방안**

- 공탁금관리위원회 의결 ⇨ 예산 지원 중단
 - 2015. 11. 6.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예산 지원 규모 논의 예정
- 공탁출연금 기금화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면 기금운용심의회 결정을 통하여 예산 지원 중단

5) 하○○ 대한변협 회장 개인에 대한 공격

- 정계 진출 포기 선언 간접 압박
- 변호사 개업 포기 선언 간접 압박
 - 대한변협 회장의 임기 종료 후 변호사 활동 ⇨ 대한변협 회장으로 쌓은 사회적 영향력, 명성, 인지도를 이용한 사건 수임

☑ 조선일보 2015. 4. 13.자 (최○○이 만난 사람)
 2년 임기가 끝나면 대한변협 회장에게는 '전관예우'가 없나(웃음)?
 "법원이 봐줘야 전관예우가 있지(웃음). 변호사로 돌아가도 사건 수임을 할 생각은 별로 없다. 그런데 내가 사법개혁을 주장해서 그렇지, 정치 성향은 보수다."

- 서울변회 회장 재직 당시 회장 지위 이용한 사건 수임 비판

☑ 중앙일보 박○○ 기자 2015. 3. 31.자 취재일기
일부는 “하○○ 변협 회장이 서울변회 회장 재직 당시 백수십 건의 사건을 수입하지 않았느냐”는 말까지 나오자 법조 3류 간 이전투구를 걱정하는 눈치다.

- 서울변회 회장 재직 시 서울변회 재정 파탄에 대한 해명 간접 압박
- 하○○ 대한변협 회장의 사건 수입 내역 및 부실 변론 사례 파악
 - 통계시스템을 통하여 하○○ 대한변협 회장의 사건 수입 내역 파악
 - ⇒ 부적절한 수입 사례, 부실 변론 사례 등 파악

6) 법무부장관의 대한변협 회장에 대한 감독권행사 촉구

- 하○○ 대한변협 회장 ⇒ 개업신고 반려 위법성 언론 통해 수차례 인정
- 대한변협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협 회장의 ‘위법행위’에 감독권 행사해야 함
- 법무부장관이 감독권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 변호사 등록 및 감독 권한을 법원이 보유하는 미국 사례 언론에 전달하며 간접 압박
 - 미국은 법원이 변호사 등록 절차 주관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법원에서의 소송대리권 ⇒ 법원이 변호사 자격 심사하는 것은 당연)

☑ 변호사법 제86조 (감독)

-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7) 기타

▣ **대법원 주최 대외 행사 시 대한변협 회장 초청 중단**

- 사법부 수립 기념일(9. 11.) ⇒ 대한변협 회장 초청 제외

▣ **대한변협 주최 공청회·간담회 참석, 토론자·발제자 추천 요청 거절**



■ 대한변협의 각종 추천권 제한 ⇨ 각종 추천권한 지방변호사회로 이관

■ 복수 협회 설치 필요성 분위기 조성

4. 신중 검토 필요한 방안

1) 대한변협신문 광고 게재 중단

■ 현황

- 법관 채용 공고(연 3회) 등 2013년부터 게재(단가 1회당 80~100만원)
-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공고도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한변협신문의 요청으로 공보관실 광고 2013년 2건, 2014년 3건 있었음

■ 검토 의견 ⇨ 신중 검토 필요

- 광고게재 중단으로 인한 압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광고 단가의 액수가 크지 않음
- 법관 채용의 경우 변호사들에 대한 홍보 효과 감안하여 대한변협신문에 광고 게재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함

2) 대한변협 주관 각종 위원회 참여 철회

■ 현황

-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 변호사연수 운영위원회 등

■ 검토의견 ⇨ 신중 검토 필요

- 대한변협 주관 각종 위원회는 법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3) 법조 인접 직역 소송대리권 부여에 대한 논의 제기

■ 현황



- 현재 소액사건 법무사 소송대리 허용에 관한 법무사법,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계류 ⇨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 회신 보류 중
- 법조인접 직역 ⇨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 검토의견 ⇨ 신중 검토 필요

-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통한 소송절차 개선 추세에 반함
- 서울변회와의 관계 고려해야 함

4) 변호사들의 재판절차 및 법원 이용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철회

▣ 사법지원실 제안

- 법원 내 변호사 대기실 폐쇄
- 법정 내 변호사 대기석 폐지
- 변호사 부적절 변론 사례집 발간
- 변론종결 후 소송위임장만 내고 재개, 선고연기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 불허 재판진행 실무 형성
- 변호사 신분증 채용 의무화 등 각종 특혜조치 폐지

▣ 사법정책실 제안

- 변론 순서 당사자 대비 우선권 배제
- 기일 지정시 대리인 일정 배려 배제
- 형사사건 국선전담변호인 증원 및 사건 비율 대폭 증대의사 피력
 - 현행 40% 수준인 국선전담변호인 사건 비율을 70~80%까지 증대시키겠다고 공표

▣ 검토의견 ⇨ 신중 검토 필요

- 기본 전략은 대한변협 회장 개인의 고립이 되어야 함



- 대법원이 변호사 전체와 대립하는 모습은 지양해야 함

5) 기타 의견

■ 사법지원실 제안

- 전산정보관리국의 변호사 수입내역 통계 추출을 좀 더 정교하게 한 후 수입내역을 국세청 등에 통보

■ 사법등기국 제안

- 등기신청시 본직 제출주의 도입 ⇨ 법률 개정 필요
- 변호사의 법무사 등록제 추진 ⇨ 법률 개정 필요
- 변호사 등기업무 수행 시 이행보증보험/공제 가입 강제 ⇨ 법률 개정 필요
- 등기사건 수입 시 신청인 본인 대면 확인 규정 신설
- 등기사건 수입 내역 세무관서 통보
- 변호사 등기사건 수입 금지 ⇨ 법률 개정 필요

5. 결론

1)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

- 대한변협과의 간담회 개최 중단

2) 추가 검토 필요한 방안

- 대한변협 주관 변호사연수 법관 출강 중단
- 변호사대회(8월 개최 예정) 불참 (대한변협 주최 행사 전면 불참)
- 변호사 평가제 시범 실시 계획 유포
- 대한변협 법률구조 예산 지원 중단
- 법무부장관의 대한변협 회장에 대한 감독권행사 촉구



■ 하○○ 대한변협 회장 개인에 대한 공격

- 정계 진출 포기 선언 간접 압박
- 변호사 개업 포기 선언 간접 압박
- 서울변회 회장 재직 시 서울변회 재정 파탄에 대한 해명 간접 압박
- 하○○ 대한변협 회장의 사건 수입 내역 및 부실 변론 사례 파악

■ 대법원 주최 대외 행사 시 대한변협 회장 초청 중단

- 사법부 수립 기념일(9. 11.) ⇨ 대한변협 회장 초청 제외

- 대한변협 주최 공청회·간담회 참석, 토론자·발제자 추천 요청 거절
- 대한변협의 각종 추천권 제한 ⇨ 각종 추천권한 지방변호사회로 이관
- 복수 협회 설치 필요성 분위기 조성

3) 신중 검토 필요한 방안

- 대한변협신문 광고 게재 중단
- 대한변협 주관 각종 위원회 참여 철회
- 법조 인접 직역 소송대리권 부여에 대한 논의 제기
- 변호사들의 재판절차 및 법원 이용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철회 [끝]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방안

2018. 7. 31.

기획조생실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 입법 성사를 위하여 **법무부의 조속한 협조 견인 필요**

- 법사위 검찰 출신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영향력 무시할 수 없음
 - 특히 법사위 1소위 소속 김진태, 김도읍 의원 등은 법무부의 중속 변수
- 입법추진 일정상 마지막 골든타임 압박

☑ 입법추진 향후 로드맵

- ▶ 2015. 4. 20. 법사위 공청회 개최
- ▶ 2015. 4월 임시국회 법사위 소위 심사
- ▶ 2015. 6월 임시국회 법사위 소위·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
- ※ 하반기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예산심사, 여야 총선 대비 정국 돌입으로 법안 심사 사실상 불가능 ⇨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의안 자동 폐기

▣ 법무부는 여전히 **공식적 신중검토·사실상 반대 입장 고수**

- 對사법부 ⇨ 상고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One of them)로 상고법원안 취급
- 對국회·BH ⇨ 의원들 상대로 입법방해 전략 구사, 반대 논리 제공

▣ 법무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후의 충격요법을 강구**해야 할 **임계상황**

- 법무부의 상고법원에 대한 입장·최대 현안과 관심사 등 분석
- 이를 토대로 법무부 접촉 주체, 시기, 협상 카드 등 설득전략 수립



2. 법무부 현황 및 향후 전망

▣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 ⇨ 이중 플레이

- 표면적 ⇨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 But 상고법원안에 대하여는 신중검토 의견

☑ 4. 20. 법사위 상고법원 공청회 장○○ 검사 발제문 일부

「상고심 재판 지연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고법원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거나 이미 시행했던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실질적 ⇨ 확고한 반대 입장
 - 법원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심리 발동 ⇨ 각종 궤변적 반대 논리 구성·유포
 - 기본적으로 타 기관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수수방관적 태도 견지
 - 다만, 대법관 증원론에 대하여는 진보 세력의 최고법원 진출을 우려하는 문제인식 가지고 있음

▣ 최근 내부적 현안·관심사 등

- 검사장 자리 확대 ⇨ 법무부·검찰의 최대 관심사
 - 인사적체에 따른 내부 불만 증폭의 주요 원인
 -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상고검찰청 신설은 매력 없음 ⇨ ∴ 검사장 최대 2 자리 가량 불과
- 디지털 증거 관련 법률 제·개정 또는 판례 변경

☑ 2015. 3. 19. 법무부장관 취임 2주년 기념 인터뷰

“안보저해사범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증거법상 특칙이나 예외를 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형사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국민일보 2015. 4. 3.자 ‘형사소송법 개정 본격 착수’ 기사

☞ 검찰, 법원의 엄격한 잣대에 위기 의식... 작년 11월 ‘증거법 연구회’ 조직, 법 개정 추진하기까지...



● 중점 검찰청 설치·운영

- 지역적 특수성 등에 따라 특정 유형 범죄의 수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지정 ⇨ 수사의 전문성·효율성 추구
 - ex) 서울남부지검 ⇨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 서울서부지검 ⇨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 울산지검 ⇨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 BH·정치권·재계와의 관계 등 외부 상황

● BH와 친밀관계 지속

- 통진당 해산결정의 후광 여전 ⇨ 공로 인정에 따른 신뢰관계 확고
- 비서실장 교체 되었으나, 비서실의 親검찰 기조에는 변함 없음 ⇨ 다만, 성완중 前 의원 자살 사건으로 인해 내부 역학구도에 변화 요인 발생

● 정치권·재계에 대한 대대적 사정 착수하였다가 역풍 직면

- 재계·자원외교·방산비리 수사 ⇨ BH發 사정 정국의 손발 역할 수행
- 前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 잠재우기 위해 가시적 성과·명분 쌓기 위해 고심하던 중 성완중 사건 발생

■ 성완중 前 의원 자살의 영향 ⇨ BH·법무부·검찰에 대한 죽음의 역풍, 메가톤급 후폭풍 발발

● 성 前 의원이 폭로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사 피할 수 없는 상황

- 4. 12. BH 입장 발표에 맞춰 신속한 특별수사팀 구성 ⇨ 엄정한 수사 의지 표명
- 자칫 철저한 수사 노력 보이지 않을 경우, 검찰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

☑ 2015. 4. 12.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긴급 기자회견

“그동안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점은 인정한다... 이번에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해 불명예를 씻을 수 있다면 더 큰 소득이 될 것... 국민 앞에 의혹을 다 씻을 수 있도록 외압이 없도록 하겠다... **검찰 개혁이 필요**”



“하다면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

- 벌써부터 야당 일각에서뿐 아니라, BH와 여권에서도 특검 수사 필요성 언급
 - BH·여권은 특검으로 조기에 수사 종료하고 이슈를 전환시키는 것이 내년 총선대비 정국 구상에 유리하다는 생각
- **BH·법무부 사정 라인에 대한 책임론 부상 불가피**
 - 사정 정국의 밑그림 그린 우병우 민정수석의 입지 좁아질 것
 - [우 수석의 데자뷰] ⇨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1과장 재직 시 노무현 전 대통령 직접 수사 후 20여일 만에 노 대통령 자살 사건 발생
 - 검찰 수사팀의 실책 지적 목소리 ⇨ ① 별건·저인망식 수사(자원개발 국 고지원금 횡령 혐의 → 회사돈 횡령·분식 혐의), ② 압박용 계좌추적·반복적 압수수색, ③ 성 의원에 대한 신병관리 부실(긴급체포 미실시), ④ 선부른 폴리바게닝 시도
 - 다만, 아직까지 야권은 BH 공격에 집중하고 있고, BH·여권은 검찰 문책의 여력 없는 상황
- **정책 결정의 중심 축 ⇨ 주무 장관인 법무부장관으로 이동**
 -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신임 비서실장의 장악력 및 민정수석의 입지 약화에 따른 여파
 - VIP의 신뢰 여전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믿고 수사를 맡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법무부장관에게 보다 힘을 실어줄 가능성 높음
 -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검찰의 수사방향 예의주시 ⇨ 일단 검찰이 수사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칼자루를 쥐 형국
- **사법부에 미칠 파장은 단선적 예측 곤란**
 - [호재 가능성] ① BH·법무부가 위기 타개를 위한 보험용으로 사법부를 우군으로 확보하고자 시도할 가능성, ② 특히, 검찰 개혁으로 분위기 확산되는 데 촉각 곤두세우며 사법부와의 공조 필요성에 무게 둘 수 있음



- [악재 가능성] ① 민정수석의 입지 약화로 법무부장관의 목소리 더 커질 가능성, ② 친박계 의원 등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에 총력 기울여야 할 상황 ⇨ 상고법원 등 사법부 현안에까지 관심 기울일 여력 부족

☑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의 관계

▶ 그다지 원만한 관계 아니라는 게 중론

- [민정수석] 연수원 19기 특수통, [법무부장관] 연수원 13기 공안통
- 황 장관 취임 후 첫 검사장 인사에서 우 수석 탈락하여 검찰 사직
- 민정수석, 법무부 상신 인사안에 대하여 과도한 영향력 행사

▶ 민정수석이 장관을 제쳐두고, 김○○ 대검 차장을 통해 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에게 직접 BH 지침 전달한다는 소문

3. 법무부 설득의 기본 방향 ⇨ 강온(強穩) 양면 설득전략에 따른 Big Deal 추진

▣ 상고법원안은 다른 현안과 비교불가의 절체절명 과제

- CJ 최대 역점 사업이자 사법부의 가장 중차대한 추진과제 ⇨ ∴ 일법 실패는 ① 대외적으로 사법부 위상 추락, ② 대내적으로 CJ의 리더십 상실이라는 최악의 위기상황 초래
- 심급체계 전반에 관한 리모델링 정책 ⇨ 신속·적정한 재판권 행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제도개선책
 - [1심] 쟁점의 조기 현출, 쟁점 중심의 충실 심리 및 실질적 증거조사
 - [2심] 심리범위 적정화
 - [3심] 대법원의 정책법원화 + 상고법원의 개별적 권리구제 기능 수행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강화

▣ 그러나 법무부의 비협조적 태도는 상당히 고착되어 있는 상황

☑ 법무부장관, 4. 8. 처장님과의 만찬 자리에서의 발언

“상고법원 도입은 일선 검찰청의 폭넓은 의견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4. 15.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행정처 기조실장·정책실장 회동 분위기



- ▶ [행정처] ① 상고법원안에 대한 대승적 협력 요청, ② 법무부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약속
 - ▶ [법무부] ① 진지한 모습·발언 결여, ② 무성의하게 상고법원안의 문제점 및 각종 대안 나열, ③ 법무부는 검찰 대변 조직 아니라는 반응
- ☞ **진솔한 의견 교환 실패**

● [원인 분석]

- ① 법원에 대한 반발·견제 심리 확산 ⇨ 상고법원 도입이 사법부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쉽게 동조해 줄 수 없다는 얄은 발상
- ② 상고법원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現 입법추진 환경에 대한 자체 판세 분석
- ③ 실리적으로 상고법원안이 법무부·검찰에 가져다 줄 이득이 없고, 그와 맞바꿀만한 등가치 현안도 없다는 인식

▣ Big Deal을 통한 국면 타개 시도

- 법무부가 현재와 같이 뚜렷한 의견 제시 없이 버티기로 나올 경우 ⇨ 공통된 이해관계를 기초로 한 우호적 호혜·협조관계 구축 요청이나 정서적 공감대 형성 노력만으로는 가시적 성과 기대 불가능
- 상고법원안 추진의 필요성·시급성을 전면에 내세운 강온(強穩) 양면 설득전략 추진 필요
 - [압박] ① 상고법원안에 대한 협조 없을 시, 양 기관의 관계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점, ② 법무부가 막후에서 對국회·BH 입법방해전략 구사해 온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 등 엄중 경고
 - [회유] 법무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Deal 가능한 유력한 카드 제시 ⇨ 전면 관계 단절보다는 협상 타결이 유리하다는 섹범 착수 유도

4. 구체적 설득 전략

가. 협상의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 영장제도의 대대적 개혁 공론화



▣ 법무부·검찰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장제도의 변화를 매개로 활용 ⇨ 수사업무와 직결되어 있어, 예민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 ①체포·구속영장제도의 일원화 추진

- 체포는 쉽게, 구속은 엄격히 통제하는 인신구속제도 수립 표방
- 2008년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뚜렷한 개선 논의 부재 ⇨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 도래하였다고 공표

▣ ②디지털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절차적 통제 방안 마련·통보

- 현재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사실상 일반영장처럼 운용되는 결과 ⇨ 검찰의 광범위한 별건 수사와 이를 통한 영향력 확대 초래 ⇨ 이에 대한 엄격 통제를 강구하는 방안 강구
- [ex] 수색영장·압수영장의 분리 발부 방안, 압수수색 방법의 사전 제한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 방안, 압수물 반환·폐기 의무 명시 방안,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실질화 방안, 압수목록의 교부 의무 강화 방안 등
-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들이 연구에 착수하여 곧 가시적 연구성과 도출 예상 ⇨ 적절한 시점에 검찰에 통보
- 언론에도 절차적 통제 방안을 공표하여 공론화 ⇨ 성前 의원 수사과정에서의 광범위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음

나. Big Deal을 위한 협상 카드

1) 수사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영장제도 개선 방안 제시

▣ ①체포·구속영장제도 개선

- [정책 타이틀] ⇨ 수사 효율성 제고 및 피의자 인권 보장에 기여하



는 신인신구속시스템 구축

- 법무부가 제도 개선의 주체로 나서기에 적합한 정책 과제
- 성완종 리스트 수사 종료 후 불거질 수 있는 검찰 책임론을 희석시키거나 그에 대한 자체 개혁 방안으로 꺼내 들 수 있는 아젠다
- 수사 편의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 간 조화로운 균형을 도모한다는 제도 개선의 명분 내세워 여론 등의 큰 관심 얻을 수 있는 방안

● [체포]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 현재 법관에 의하여 전부 심사·통제하는 방식에서 탈피 ⇨ 수사기관에 체포에 관한 상당한 재량권 부여, 수사 초기 신속한 신병 확보 가능

● [구속 심사] 체포 후 계속 신병확보 필요성 등 심사

- 사실상 체포와 구속의 일원화
- 외부에는 구속 여부에 대한 엄격 통제 방안으로 표방 가능
- 실질적으로는 체포 상태에서의 수사결과가 영장실질심사에 반영되므로, 구속을 높아질 가능성 有

● [구속 심사 후] 기소 전 보석제도와 함께 영장항고제 도입

- 법무부·검찰이 줄곧 주장해 온 영장항고제 수용
- 영장항고제를 통해 구속영장발부의 객관적 기준 수립
- 기소 전 보석제도 도입, 구속영장재청구를 영장항고제로 통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 [2]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 정비 및 증거능력 인정 확대 방안

- [최근 검찰 관심사] ① 부패범죄·기업범죄 등에서 디지털 증거의 연결 저장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압수수색 필요성 주장, ② 공안사건 등에서 작성명의를 불명확한 디지털증거(ex. 북한으로부터 수신된 이메일)의 진정성립 인정에 상당한 어려움 경험 ⇨ 증거법 개정 모색



- 디지털 정보에 대한 효율적 압수수색절차 마련 ⇨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절차 보완과 함께 연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

☑ 2015. 2. 2.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자

- ▶ 압수 목적물에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포함 명시
-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보존요청 근거 마련
- ▶ 정보의 출력·복제 불가능한 경우 등 정보저장매체 압수 허용
- ▶ 압수대상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정보저장매체 등 압수수색 허용

- 증거의 성립진정 인정에 관한 새로운 기준 마련 ⇨ ‘反테러법’과 같이 공안사건에 특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입법 과정에서 공조체제 구축

2) 법무부·검찰 조직 및 기능 확대 방안 제시

☐ ① 검사장 자리 증설 방안

- [조직] 법무부 송무차관직(제2차관) 신설 ⇨ 그 산하에 국가송무국, 국제법무조약국 등 검사장급 보임 가능한 2개 이상의 국 설치

☑ 미국의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제도 참조

- ▶ 1870년 Judiciary Act에 의해 설치
- ▶ ①정부가 패소한 모든 사건 검토하고 상소 여부 결정, ②어떤 사건을 대법원이 심사할 것인지 의견제출, ③대법원의 모든 사건에서 미국연방을 대표
- ▶ 산하에 4명의 부차관(Deputy)과 20여명의 차관보(Assistant solicitor) 두고 있음
- ▶ 평판 높은 전문지식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받고 있음

- 상고검찰청 신설과 함께 추진 시, 최소 5명의 검사장 자리 증설 가능

- [기능①] 신설된 송무차관 조직에서 법정조언자 의견제출(Amicus curiae) 업무 적극 수행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에서 국가 의견 및 공익 대변

- [기능②] 상고법원안에 따른 대법원의 사건분류심사 절차에서, 공식



적으로 사건분류 의견 개선

■ **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검사 보임**

- 파견 검사를 형사공동조 등에 투입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 법리 검토 등 역할 부여
- 대법원의 수사실무 등 형사사건에 대한 입체적 이해도 제고 ⇨ 형사재판 판례 형성에 반영
- 연구업무에 관심 있는 상당수 검사들의 선호 있을 것 ⇨ 검찰 인사 적체 해소에 실효적

■ **③ 법무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교차 파견**

- 검사를 사법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형사법 관련 연구업무 부여

☑ **사법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위촉 근거 법령**

▶ **법원조직법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②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하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 **법원조직법 제76조의5(초빙연구위원)**

① 제76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빙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법무연수원에 판사를 파견하여, 검사·수사관들 대상으로 형사재판 관련 특강, 형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업무 등 수행

☑ **법무연수원 조직 및 기능 개요**

▶ [기획부와 교정연수부]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

▶ [연구위원] 형사·법무정책 수립,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 연구위원 보임자격 ⇨ 고위 공무원 단체 소속 일반공무원 or 검사

▶ 교수 ⇨ 자격 제한 無



- [과건요건] ①국가기관의 과건 요청, ②업무의 성질상 법관 과건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해당 법관의 과건근무에 대한 동의, ④법원의 허가
 - [과건요건 충족 여부] 연구업무는 형사재판분야와 밀접한 관련성 有 ⇨ 법원조직법 제50조의 「업무성격상 법관과건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해당
- [과건기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연장 가능
- [검토] 직제규정(대통령령) 개정하지 않는 이상 연구위원으로 보임하는 것은 곤란, but 교수로 보임하는 것은 가능
- 수사 및 형사재판, 형사법제도 관련 법원·검찰의 상호간 인식의 간극 좁히고, 법질서 수호 및 국민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공동의 연구성과 창출

■ 4)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

- 검찰의 이른바 '안보위해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요청
- 공안사건에 대한 법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건 처리의 일관성·효율성 도모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법원에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 등에 관한 전담 재판부 설치

■ 5) 특성화법원 설치 방안

- 검찰의 이른바 '중점 검찰청 설치 방안'에 적극적으로 대응
- 법원에서도 일부 지방법원을 특정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

3) 그 외 수사실무 지원 방안 등

■ 前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 도입 방안



- 실제 수사현장에서 묵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플리바게닝을 공식적으로 법제도화하는 방안
 - 뇌물, 마약, 조직폭력 사건 등에서 먼저 도입하고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협상 가능
 - 성 前 의원 자살 원인의 하나로 검찰의 무분별한 플리바게닝 지적
⇒ 단기적으로는 추진의 장애 요소일 수 있으나,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 될 수 있음
- **①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방안 (2011. 7. 정부 제출 형소법개정안)**
- 범죄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구인영장 발부받아 강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에 협조
- **③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 도입 방안 (2011. 7. 정부 제출 형소법개정안)**
- 뇌물범죄, 범죄단체 조직범죄 등에 대하여 범죄 가담자가 범죄규명에 필수적 증언을 한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협조
- **④사법방해죄 신설 방안 (2011. 7. 정부 제출 형소법 개정안)**
-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하는 공무원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를 처벌하고, ② 타인의 증언 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허위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폭행·협박하거나 타인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약속·공여·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처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
 - 참고인의 허위진술로 인한 수사절차의 지연, 수사인력·비용 낭비 등 문제점 해소에 기여



다. 접촉·설득 대상자

▣ 고려 사항

- 법무부장관과의 직접 담판 재추진 ⇨ 비현실적
 - 성완중 리스트 수사로 정치권 등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고법원안을 논제로 한 협상테이블 추진은 무리
-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재접촉 ⇨ 협상 타결 난망
 - 협상의 역량과 자질에 의문 ⇨ 최근 회동에서 나타난 무성의한 태도 등에 비추어 입장 변화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움
 - 안○○ 검찰국장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대변인격 ⇨ 反법원 정서와 깊은 사법불신 가진 민정수석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함

▣ 새로운 접촉면 발굴 ⇨ 김○○ 법무부 차관

- [인적사항] 1961년생, 서라벌고, 서울 법대, 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조실장·검찰국장 등 역임
- [성향] 매사에 꼼꼼하면서도 탄탄한 업무능력, 조직 내 리더십과 친화력 뛰어나다는 평, 언론관계 원만
- [특징] 법무부장관의 절대적 신임, 상대적으로 민정수석과는 소원

☑ 2015. 2. 검찰 인사 관련

▶ 법무부장관이 김 차관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내정하여 인사안 작성하였으나, 민정수석이 개입하여 現 박○○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막판 교체되었다는 후문

- ①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상고법원 관련 메신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
 - ② 검찰 내 신망 등에 비추어 Big Deal을 통해 제도 개선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위치와 능력 확보
 - ③ 상고법원안을 적극 반대하는 민정수석, 법무부 검찰국장 라인에 대한 반발 심리 적절하게 이용 가능
- [사법부 접촉 인물] ⇨ 서울고법 이○○ 부장판사



- 김 차관과 1961년생, 서울 법대 81학번 동기동창으로 절친 사이
- 사법정책실장 역임하여 상고법원 추진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

라. 접촉·설득 시기 ⇨ 6월 임시국회 임박한 시점

■ 약간의 잠복·이완기 필요

- 이미 법원의 입장은 법무부에 충분히 알려진 상태 ⇨ 단기간 내 재 접촉 시도는 초조감만 상대에 드러내어 협상에 악수가 될 수 있음
- 6월 임시국회 직전까지는 협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수행하여 유리한 협상 환경 구축
- 법무부·검찰도 성완중 리스트 수사로 인하여 당분간 **Big Deal**을 심사숙고할 계재 못됨
- 적어도 5월 말 무렵에는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 나올 것 ⇨ 특히 영장 처리 결과 및 그에 대한 여론의 반응 등에 따라 영장제도 개선 제안의 타이밍이 확보될 수도 있음

■ 4월 임시국회 법률안 심사결과 분석 필요

- 4. 20. 법사위 전체회의 공청회, 4. 21. 또는 4. 24. 법사위 1소위에서의 논의 분위기 파악
- 특히, 검찰 출신 의원들의 전반적인 스탠스, 발언 내용, 강도 등 정밀 분석 ⇨ 대응 기초, 논리 등 재점검

■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최후 통첩식 협조 요청

- 영장제도 개선 방안, 법무부·검찰 조직 확대 방안, 효율적 수사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 등과 상고법원 도입과의 **Big Deal 제안**
- 상고법원 도입은 좌절 불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고지
- 협상 결렬은 양 기관의 전면적 관계단절 결과 초래할 것임을 경고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2015. 4. 25.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실

1. 개요

■ 게재 콘텐츠

- 설문조사, 지상좌담회, 사내(논설위원 등) 칼럼

■ 집중 게재 시기 : 5월 4주 ~ 6월 1주

- 법안 심의 일정 고려 : 1소위 회부(4월 국회) → 법안 통과(6월 국회)
- 6월 국회 개원 직전 홍보 집중 필요
- 설문조사 채택 시 : 설문조사 및 분석 기간 고려

2. 설문조사

가. 추진 배경

■ 기획기사의 파급력 높일 수 있는 객관화·수치화된 표지(標識) 확보

- 대한변협, 서울변회의 설문조사 결과가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상황 ⇨ 상고법원 찬성측 입장에서 인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사결과 필요

■ 방어적·수세적 홍보에서 적극적·공세적 홍보로 나아가야 할 상황

- 입법 성사 위해 시간 충분치 않음 ⇨ 역량 집중하여 극적인 기회 마련 필요
- 설문조사 실시에 다소간 Risk 있을 수 있으나, 돌파 전략 구사 필요

나. 기대 효과

■ '전문가집단도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반대논리 해소

■ 설문조사 과정에서 법률안에 대한 홍보를 통해 긍정적 여론 조성

■ 법조계 내 여론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소위 등에서 대안 제시 → 공청회 제안사항 및 의구심 해소 가능

■ 변호사 다수의 긍정적 의견 확보될 경우, 입법 추동력 고양

다. 구체적 시행 방법 검토

■ 조사방법

● ①이메일 조사 방안

- [장점] 다수의 변호사 참여로 결과 신뢰도 확보, 비용 저렴
- [단점] 상고법원 반대집단의 조직적 참여로 결과 왜곡 가능성

● ②전화 조사 방안

- [장점] 결과 왜곡 우려 적음
- [단점] 낮은 응답률로 표본수 확보에 어려움, 본인 여부 확인 곤란, 법안 내용 설명 어려워 홍보 효과 없음, 스팸성 전화로 받아들여 부정적 답변 가능성

● ③대면 조사 방안

- [장점] 결과 왜곡 우려 적고, 조사 대상자를 유리한 방향으로 선정 가능, 소극적 지지자들의 설문참여 가능성이 다른 방안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단점] 조사 사실 자체가 과도한 이목을 끌 가능성, 비용 과다

● 검토 ⇨ ①안 이메일 조사

- 대한변협 등이 실시한 통상적인 조사방법임
- 결과 왜곡 가능성은, 설문문항 설계, 조사기간 조정 등의 방법으로 방지 가능

■ 조사기간

● 응답률 10% 도달하는데 2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대한변협 조사시 28일, 서울변회 조사시 22일 각 소요, 각 응답률 10%

● 미리 조사기간을 공지하지 않는 방안

- ※ 응답자 수는 최소한 대한변협의 응답자수 1,572명보다 상회하는 것이 유리함
- 다만, 일정한 수 또는 응답률에 도달하면 중단하는 방식 고려할 필요 있음
- ex) 응답자 1,500명 정도인 상태에서 집단 반대 회신이 제출되기 시작하는 경우

응답자 1,500명 기준으로 결과 발표

● **설문 시작일시 결정에 고려할 요소**

- **[대한변협의 공격 예상]** 설문조사가 시작되면 ①설문의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 ②반대집단에 대한 설문참여 또는 설문거부 독려, ③맞대응 설문조사 등으로 조사에 악영향 미치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됨 ⇨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 설문조사는 최대한 짧게, 조사 완료시 바로 결과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있음
- 언론보도 예정일 약 25일(= 조사기간 20일 + 분석 및 기사작성 5일) 전에 시작함이 바람직 (ex: 6. 1. 보도시 5. 6. 시작)
- 조사 완료시 바로 기사 나갈 수 있도록 조선일보 사전 협조 필요

■ **이메일 주소 수집 방안**

- 대한변협에서 개인정보 취득경위를 문제삼을 수 있음 ⇨ 대한변협 발간 회원명부의 이메일 주소 활용

■ **지역별 편차 보정 방안**

- 응답 결과를 지역별 변호사 비율로 보정할 필요 ⇨ 전국 변호사집단 전체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한다는 명분** 있음
- 일부 지역(부산 등)의 집단 반대로 인한 결과 왜곡을 희석하는 효과 있음
 - ex)전국 평균 응답률이 10% 수준(약 1,500명)임에도 부산변회의 반대 독려로 인하여 부산변회 소속 변호사의 약 50%인 300명이 반대 취지로 대거 참여한 경우 ⇨ 부산 변호사 응답자 300명 전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전국 변호사 중 부산 변호사의 비율(약 4%)에 해당하는 약 60명(=1500×4%) 부분만 반영
- **구체적 보정 방안** ⇨ 미리 정하거나 공지하지 아니함이 바람직
 - 보정 방법으로 ①**비율로 환산**(위 설례에서 300명 중 250명이 반대한 경우라면 반대를 50명(=250×60/300)으로 환산), ②**선착순 기준**(위 설례에서 부산지역 60번째 회신까지만 반영) 등의 여러 방법이 있음
 - 조사결과에 따라 유리한 방안 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 보정방법은 사전 공지하지

아니함

■ 참여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한 설문 방식 채택

- 이메일에 대하여 회신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메일 중 자신이 동의하는 항목을 **클릭하는 것으로 설문 참여가 마무리 되는 간편한 방식**의 조사 필요
- 설명 및 문항을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여 **참여자의 시간과 노력 절약**
- ⇨ 상고법원에 '적극 찬성하지는 아니하나 반대까지는 아닌' **소극적 지지 변호사들의 설문 참여 극대화**

라. 설문 문항(안)

■ 기본 방향

-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안'이 아닌 국회의원 168명이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형태**
- 법률안 중 변호사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을 부각**시킨 후 마지막에 법률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
- 각 문항의 구체적 워딩과 배열 순서 등은 설문조사 전문가와 추가 협의할 필요

■ 인적 사항 확인 문항

- 귀하의 변호사 사무실은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 지역별 편차 조정을 위한 항목
- 귀하의 법조 경력은 몇 년입니까?
 - 특정 경력의 집단 반대에 대비

[설문 예시]

※ 상고법원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상고법원 도입 방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법원 외 별도의 상고심 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함
- 대법원이 필수적으로 심판하는 사건을 법률도 별도 규정하고, 나머지 사건은 전부 대법관이 심사하여 대법원 사건과 상고법원 사건으로 분류함
- 사건 심사 기준 : 법령해석통일 및 공적 이익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은 대법원이, 그렇지 않은 사건은 상고법원이 심판함

- 사건 심사에서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 관해 필수적 변호사 대리 제도를 도입함
- 상고법원에는 민사, 형사, 행정, 특허 등 전문재판부를 두고, 부장판사 없는 대등재판부로 운영하며, 외부 법조경력자도 상고법원 판사로 임명함
- 심리불속행제도는 폐지함

1. 귀하는 현행 상고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모르겠다 ④ 아니다
2. 법률안은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모르겠다 ④ 아니다
3. 상고법원이 도입되는 경우, 상고심 심리기간이 현재보다 단축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모르겠다 ④ 아니다
4. 상고법원이 도입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모르겠다 ④ 아니다
5. 상고법원 판사의 임명에 관하여 사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및 행정부도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모르겠다 ④ 아니다
6. 법률안은 일부 대법원 상고사건에 대하여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 도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찬성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모르겠다 ④ 아니다
7. 귀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에 찬성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모르겠다 ④ 아니다

[1] 귀하의 변호사 사무실은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 ①서울, ②경기, 인천 ③강원 ④충북, 대전 ⑤대구 ⑥부산, 울산, 경남, ⑦광주, ⑧전북, ⑨제주

[2] 귀하의 법조 경력은 몇 년입니까?

- ①5년 미만 ②5년 이상 10년 미만 ③10년~20년 ④20년이상

- 보다 간이한 설문의 경우에는 3번과 4번 생략 가능

마. 조사 주체

■ [1안] 조선일보(실제로는 설문조사 기관 담당 예상)

● 장점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보도 여부 통제 가능
- 대한변협 등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기 어려움

● 단점

-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의 설문 참여율 저조할 가능성

▣ [2안] 서울변회(자체 설문조사 시스템 이용)

● 장점

- 서울변회를 통한 설문조사 참여 독려가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움

● 단점

- 설문조사 결과 작년에 비해 좋지 않으면, 집행부의 정치적 부담
 - 5월 1일 전후 법률신문을 통해 '취임 50일 기념 인터뷰'에서 상고법원에 대한 '찬성' 입장 표명 예정 → 설문조사가 '신임투표'로 해석될 소지 있음
- 특정 언론사에 설문조사 결과 제공하는 데 거부감 가질 수 있음
 - 작년 서울변회 설문조사도 언론사에서 전혀 보도하지 않았음

▣ 검토 → 1안

- 조선일보가 주체로 실시하는 방안이 설문조사 성공가능성 확보, 조사결과에 효과적인 홍보에 보다 유리
- 1안에 의할 경우, 전문 설문조사기관에 지급할 용역대금 지원 필요
 -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 등 게재하면서, 광고비에 설문조사 실시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안 등 검토 {일반재판운영지원 일반수용비 중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지원 세목(1133-210-01) 999,000,000원 편성}

바. 로드맵 (5. 26. 월요일 보도 가정)

- 이메일 리스트 확보, 실시기관 선정 및 설문 문항 확정 4. 30.까지
- 설문조사 실시 5. 1. ~ 5. 20.까지
- 조사결과 분석 및 보정 5. 25.까지

사. 기타 고려 사항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통제 가능성

- 찬성 60% 이상 : 긍정적

- 찬성 50% 이상 ~ 60% 미만 : 활용 가치 크지 않을 수 있음
- 찬성 50% 미만 : 활용 불가

■ **설문조사 적정 참여 확보 수단 필요**

- 서울변회, 대한변협의 유사설문 2회 실시(4개월 전) → 참여를 저하 가능성

3. 지상 좌담회

가. 시기와 형식

■ **설문조사 결과 공표와 동시에 게재(일응 5월 26일경)**

- 여론조사 결과 분석 기간 고려
- 6월 국회 일정 고려

■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참석자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끌어 가는 형식**

나. 참석자 (3명이 적절)

■ (사회 원로) 오○○, 김○○, 부○○, 이○○, 배○○, 신○○

■ (실무 원로) 이○○,¹⁾ 권○○²⁾, 권○○³⁾ → 추가 발굴 필요

■ (다양화 원로)⁴⁾ 전○○, 전○○, 박○○, 차○○, 하○○

다. 좌담 내용

■ **도입**

- 상고법원 관련 법안 제출 및 법사위 논의 상황 소개
- 참석자 소개(경력 등)

1) 오○○, 이○○ 모두 포함 시 지나치게 親 법원 또는 親 상고법원 견해자로 구성되었다고 볼 여지 있음. 두 분 모두 조선일보에 찬성 기고문 게재함
 2) 검찰·법무부 등의 중립 유도 목적이나, 발언의 수위 및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
 3)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입장과 선진국 제도에 대한 설명의 설득력 제고 가능
 4) 참석자 3명 모두 남성의 사회 원로만으로 구성될 경우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름과 경력만으로도 비슷한 진영 소속으로 추측되는 이들로만 구성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입장에서 상고법원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낼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함

■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 공통 인식

- 대법원의 상황 + 글로벌 스탠더드
- 국민의 불이익 방지 불가
- 제도 개선 공감대 형성 : 설문조사결과 소개(기존 2개+신규 1개+디지털썰전)

■ 상고심 개선의 역사 : 모두 실패 → 근본적인 대안 필요

- 기존 제도 도입 역사 및 한계
- 참여정부 논의(법무부 제출, 참여연대, 경실련, 임○○ 등 찬성)
- 이명박 정부 논의 : 대법관 증원론 폐기

■ 위헌론 (간단히 언급)

- 학계 다수설, 헌재 결정

■ 대법관 증원의 한계

- 전원합의체 활성화 방향에 역행 :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상황
- 헌법 예정 사항 아님
- 인사청문회의 현실적 문제

■ 상고법원안의 내용 및 기대 효과

- 신속 : 설문조사 결과 인용
- 충실 + 전문 + 심불 폐지
- 전원합의체 활성화 : 정책법원 기능의 효용 → 매일경제 보도 이후라면 정책연구용역 일부 인용 가능

■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법원 : 사실심 충실화 + 임명절차 보완 방향 제시
- 검찰 : 객관의무 + 공정성 강화 → 충실한 사실심 구현의 협조의무
- 변협 : 충실한 사실심 구현의 핵심 주체
- 사실심 충실화는 법조 3륜의 공통적인 책임이라는 점 인식

-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할 필요
- 상고심 제도 개선 구현 + 불필요한 상고 절제 → 선진 사법시스템 구현

▣ 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국회의 책임감 강조

- 동일한 논의 무한 반복
-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신뢰 외면
- 광복 70주년 등 역사적 의미에 비추어 논의 종결 필요

라. 사전 자료 제공 ⇨ 조선일보측 및 좌담회 참석자에게 제공

4. 사내 칼럼

가. 시기

- ▣ 설문조사와 지상좌담회 보도 이후 6월 소위 논의 전

나. 내용

- ▣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설문조사 포함) 종합 정리 + 대안 제시 + 법안 처리 시급성

다. 집필란과 집필 후보자

- ▣ 오피니언 페이지 「칼럼」, 「태평로」, 「데스크에서」

▣ [1안] 칼럼

- 지면 분량과 영향력에서 「칼럼」란이 가장 유리함
- 칼럼니스트 : 김○○ 주필, 송○○ 주필, 양○○ 논설주간, 김○○ 부국장 겸 사회부장, 최○○ 선임기자, 박○○ 논설위원, 박○○ 디지털뉴스본부장, 주○○ 정치부장

▣ [2안] 태평로 또는 데스크에서

- 지면 분량이나 영향력면에서 칼럼에 미치지 못하지만, 집필진에 접근하기가 보다 쉬움

-
- 집필진 : 이○○ 논설위원, 김○○ 논설위원, 신○○ 논설위원 및 각 부장, 차장, 팀장 등
 - [참고] 정○○ ⇨ 오피니언란 「법과 사회」란 고정 집필
 - 2014년에는 1월에 1회 정도 집필
 - 2015년에는 1/17, 4/10 집필

■ 검토 ⇨ [2안]

- 정○○ 칼럼 등으로 인해 조선일보가 반대입장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굳이 「칼럼」을 주장할 것은 아님
- 2안이 추진 가능성 및 글 내용의 긍정적 방향 확보 측면에서 유리함

라. 자료 제공 등

■ 집필진에 관련 자료 및 집필 내용에 관한 기초 보고서 제공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對국회 전략

2018. 7. 31.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사법부 최대 현안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비상한 각오와 엄중한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임**
 - 상고법원 입법이 대법원장님의 최대 역점 사업이자 사법부의 가장 중차대한 추진 과제임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 ⇨ ∴ 입법 실패는 ① 대외적으로 사법부 위상 추락, ② 대내적으로 대법원장님의 리더십 상실이라는 최악의 위기상황 초래
- **입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 ⇨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 필요**
 - 상고법원안이 당초 기대와 달리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 현실적으로 희박(여야 모두 동일한 인식) ⇨ 정기국회까지 계속되는 장기 소모전 양상을 띠게 될 여지 高
 - 6월 통과를 목표로 사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총동원하는 총력전 수행체제의 입법추진전략 재검토 필요
 - 법률안 통과목표시기를 입법환경의 변경과 연계하여 재설정하면서 사법부 역량의 투입시기도 효율적으로 재조정
 - 특히 신속한 즉응태세를 완비하여 역량 투입효과를 극대화하는 입법추진 전략 수립 필요
-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치밀한 對국회 전략** 여전히 **긴요**
 - 법안 심사권 가진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한 의원 접촉·설득에 전력 집중



- 막후 세력인 BH·법무부의 입법협조 획득을 위한 다각적인 설득노력,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과 병행
- **[의원별 맞춤형 접촉·설득전략 수립]** 공청회까지 드러난 의원 개개인의 성향, 관심 사항, 상고법원안에 대한 주요 반대논거 등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접촉·공략 추진**
- **[단계별 대응전략 수립]**
 - 법사위 통과 로드맵에 따라, **공청회 결과 분석을 토대로 향후 단계별 국회 대응전략 입안**
 - 6월 임시국회에 대비한 **단기전략**과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장기전략** 수립

2. 국회 입법 환경 및 법사위 통과 로드맵

가. [입법 환경 현황] ⇨ 여전히 **반대 기류** 팽배, But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에 동의**, 구체적 개선 방향에서 입장 차이

▣ 전반적으로 견제·반대 분위기

- [여당] 검찰 출신 의원들이 반대 세력의 중심임
 - 대표적으로 김진태, 김도읍 의원 등
- [야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 기류 강함
 - 특히 전해철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 등 민변과 연계성 강한 親盧 의원들이 반대 세력의 중심임
 - 서기호 의원은 주관적 감정의 발로로 극도의 반대 편향성 드러내고 있음

☑ 경향신문 4. 25.자 '대법원, 40분에 한건씩 찍는 판결공장' 기사 중 일부

「지난해 12월 판사 출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등 168명이 상고법원이라는 제도를 발의했다.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여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률 관련 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같은 판사 출신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상고법원 법안은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문제의 **심각성**

- 반대 의원들이 주로 **법사위에 포진**되어 있음

▣ **하지만 정책세미나,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수위는 톤 다운된 상황**

● 상고법원 공청회를 통해 **국회 내 심층 논의 및 공론화 본격 돌입**

☑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 개요**

- ▶주최: 국회 법사위
- ▶일시·장소: 4. 20.(월) 16:45~20:00 국회 법사위 회의장
- ▶참석: **이상민 법사위원장 외 법사위원 13명** (불참: 정갑윤, 전해철 의원, 미발언 : 노철래, 김재경 의원)
- ▶진술인: 서○○ 교수/유○○ 교수/이○○ 교수/이○○ 변호사/장○○ 검사/한○ 사법정책실장
- ▶진술인 각 10분씩 발제 후 의원들 개별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 대부분의 의원들이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에는 동의, 다만 상고법원 도입에 대하여는 입장차 보임

▣ **[향후 변수 ①] 5. 31. 법사위 여당 간사 교체 확실 ⇨ 입법 추진에 부정적 파급력 우려**

● 現 홍일표 의원에서 이한성 의원으로 교체 예정

- [이한성 의원] (중략) 하다는 평, 검찰 출신임에도 법무부에서조차 간사 교체에 반대한다는 소문

☑ **이한성 의원 자질론 제기 사례**

(생략)

● 다만, 이 의원이 20대 총선 대비 지역구 관리를 위해 당내 경북도당 위원장직을 원하고 있어, 법사위 간사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는 당내 예측도 흘러나오고 있음



▣ [향후 변수 ②] 여당의 4·29 재보선 압승에 따른 정국 변화

- [여당] '성완종 리스트' 악재를 극복하고 선거에서 완승 ⇨ 김무성 대표의 입지 강화

☑ 대선주자 지지도... 김무성, 문재인 누르고 처음 1위 (동아일보 5. 2.자 기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29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처음으로 선두에 자리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23.3%를 얻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21.8%)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 김무성 대표에 대한 접촉·설득 방안 수립 필요
- [야당] 선거 완패로 당분간 정치 현안 등의 적극 추진이나 조직적 대응 어려울 것
 - 친노 중심 지도부의 당장악력 상실 및 계파별 분열 심화 ⇨ 구심점 상실로 상고법원에 대한 당론을 정할 여력 없을 것으로 예상
 - 개별 의원의 찬반 활동 예상되므로, 종전의 개별 설득 작업 지속강화 필요

나. 법사위 통과 로드맵

1) 4월 임시국회

▣ 공청회 이후 첫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 1소위 회부

- 4. 29.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고법원안 상정되어 1소위로 회부됨
- 5. 1. 열린 1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심사시간 부족하여 실제 논의 불발

☑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 ▶ 전체 회기; 4. 7. ~ 5. 6.
- ▶ 법사위 전체회의; 4. 29. 및 5. 6.
- ▶ 법사위 1소위; 5. 1. 및 5. 4.
- ▶ 본회의; 4. 30. 및 5. 6.

2) 6월 임시국회

▣ 5월·6월 총력전체제 정비 및 노력에 의한 법사위 1소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 추진

☑ 6월 국회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임기만료 및 자동폐기 가능성 有

☞ 하반기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예산심사, 여야 총선 대비 정국 돌입 ⇨ 법률안심사가 뒷전으로 밀릴 경우,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의안 자동 폐기

■ 법사위 1소위에서의 논의

- ① 3. 10. 출범한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논의 경과 설명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 및 성과 홍보
- ② '상고법원 설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정책연구용역 결과 발표 ⇨ 상고법원의 경제적 효용 구체적 수치로 홍보
 - 4. 24. 서울대 허○○ 교수 연구결과 확보 ⇨ 상고법원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대법관 증원보다 우월하다고 분석됨
- ③ 입법환경 및 논의 진행상황에 따라 수정안 제시 ⇨ 대법관 증원론 및 대법원 구성 다양화, 상고법원 법관 임명절차, 필수적 대법원 심판사건 범위 확대,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 두는 방안 등

3) 9월 정기국회

■ 법률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 수행

- 6월 법사위에서 실질적 논의 개시 ⇨ 정기국회 통과로 목표시기 재조정
- 상반기 국회의 법률안 심사 실적이 저조하므로, 국정감사 종료된 10월 말경부터 법률안 심사에 돌입할 여지 충분

☑ 종전의 정기국회 이후 법사위 고유법안 심사 일정

- ▶ [2011년(19대 총선 직전)] 10. 24. 제1소위 개의, 12월 말 임시회 개의
- ▶ [2012년] 11. 15. 제1소위 개의, 12월 말 임시회 개의
- ▶ [2013년] 정기회에서 사개특위 결과보고 등으로 법안심사 미실시, 12월 중순 임시회 개의하여 법안 심사
- ▶ [2014년] 11. 6. 제1소위 개의, 12월 말 임시회 개의

- 6월 국회에서의 견제·반대 논리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



3. 법사위원 등 접촉 계획 및 설득전략

가. [목표] ⇨ **유리한 입법 환경 구축**

- [반대 의원] 반대수위 톤 다운, 유연성 갖도록 설득
- [찬성 의원] 확실한 우군으로 확보, 적극적 역할 기대
- [유보 의원] 찬성 입장으로 선회

나. [시기] ⇨ 입법추진 로드맵 수정에 따라 **접촉·설득 시기 재조정**

■ 6월 임시국회 이전 접촉·설득

- 5월부터 6월 초까지 반대 의원 중심으로 접촉
- [고려사항①] 의원들 5월 외유 일정으로 접촉 어려울 수 있음
 - 홍일표 의원 ⇨ 5월 중순 외유 예정
 - 이상민 위원장, 전해철 의원 ⇨ 5. 20.~ 5. 28. 호주·뉴질랜드 방문 예정
- [고려사항②] 의원들의 상고법원에 대한 피로감 해소방안 필요
 - [현황]상당수 의원들이 법원의 지속적인 상고법원안 통과 부탁에 만성화됨
⇨ 반응이 무뎠고 진중한 태도 결여
 - [대응①]찬성 또는 유보 의원들에 대하여는 최대한 집약된 접촉 추진
 - [대응②]의원별 접촉 주기에 약간의 간극 설정
 - [대응③]의원별로 접촉 루트 최소화하여, 너무 많은 경로로 상고법원안 전달하지 않도록 자제
 - [대응④]전략적으로 법률안 통과에 약간의 여유와 자신감 표출

■ 6월 임시국회 이후 접촉·설득

- 6월 법사위 논의에서 드러난 쟁점, 반대 논리 등 분석 ⇨ 협상카드 및 설득논리 재무장
-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전까지는 법사위원 설득 완료해야 함



- 8월경까지 드러나는 의원별 입장 정리한 후, **9월부터 화력 집중**하여 단기간 내 **설득 총력전 수행**
- **법안 발의**를 위한 **접촉 시와 유사한 빈도 및 강도로 대면 설득 강화**

다. [방법] ⇨ 공청회 발언 내용 등을 토대로 의원별 개별 접촉 및 맞춤형 설득·공략

1) 공청회 의견 표명에 기초한 법사위원들 기본 입장 분석

	찬성 ¹⁾	약한 찬성	유보	약한 반대	반대	불참, 미발언 ²⁾
여당	*홍일표 *이병석			이한성	김도읍 김진태	*정갑윤 *노철래 *김재경
야당	*박지원 *이춘석	*임내현 우윤근	*서영교 이상민		서기호	전해철

■ 찬성 의원 주요 발언

	의원	주요 근거	추가 제안, 의문 제시 사항 등
여당	홍일표	-국민을 위한 개선책 -대법관 소수 증원은 해결책 못됨	-상고법관 임명과정에 입법·행정부 관여
	이병석	-상고제도 개선 결론 내릴 시기 -한국형 제도개선책으로 상고법원 적합	-상고법관 임명과정에 입법·행정부 관여 -특별상고 인용 시 인지세 환급
야당	이춘석	-사실심 강화, 대법원 구성 다양화 등 전제로 찬성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에 두는 방안
	박지원	-신속 재판, 상고 폭증 개선책으로 상고 허가제보다 우위 -항소심을 고법과 지법 항소부가 분담하 듯이 상고심도 분담 가능	-법조일원화에 따른 상고법원 구성

- 1) ‘*’는 공동발의자, 굵은 글씨는 1소위 소속
- 2) 공청회 불참한 정갑윤 의원, 참석하였으나 발언하지 않은 노철래, 김재경 의원은 찬성에 가까운 입장, 공청회 불참 의원 중 **전해철 의원만 반대 의원**에 해당함



	임내현	뚜렷한 찬성 근거 없음 ⇨ 약한 찬성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에 두는 방안 -필수적 대법원 심판사건 확대 -대법관 다양화 -대법원장 권한 강화 우려 해소 방안
	우윤근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음 ⇨ 약한 찬성	-위헌론 해결 여부 의문 -헌법상 독일식 대법원 구성 가능 여부 의문

■ 유보 의원 주요 발언

	의원	주요 근거	추가 제안, 의문 제시 사항 등
야당	서영교	-상고법원 필요성 인정되나, 전제조건 충족 필요 -국민의 신뢰 회복 선결과제	-대법관 업무 과중 등에 대한 공감 방안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수직적 관계 강화 우려 -법원 내 아래로부터 의견 수렴 부족
	이상민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음	-구체적인 사실심 강화 방안 필요 -일선 법관들의 의견수렴 필요

■ 반대 의원 주요 발언

	의원	주요 근거	추가 제안, 의문 제시 사항 등
여당	김도읍	-1심 충실화 필요(1심 형사단독 항소율이 형사합의부보다 매우 높음) -상고허가제가 바람직	-상고사건 과다 원인 분석 필요 -상고법원 판사로 법관 위주 배치 우려 ⇨ 하급심 부실화
	김진태	-중요한 심급의 법원을 증설하는 문제 -막말 등 법원의 잘못된 관행 개선 필요 -사건 수 정점 도달	
	이한성	뚜렷한 반대 근거 없음 ⇨ 약한 반대	-지역법관, 전관예우 등으로 형사상고 다 -책임용강화, 양형기준 준수, 편향 판결 자제 등 필요
야당	서기호	-사실심 충실화에 역행(상고증가+1심 공동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심급 달리해야 함 (현재 90헌바1 사건 언급) -고법 상고부보다 후퇴한 제도	-대법관 3~6명 증원 -독일식 대법원 운영 -사건증가 지속에 의문 -사실심 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필요



▣ 쟁점별 · 주제별 의원 분류

항목	관심 사항	의원	설득 방안
상고법원 도입 전제조건	사실심 강화	(여)김도읍 (야)이상민, 이춘석, 서기호	-종래 지속적 추진경과 설명 -참신한 제도개선책 제시 -향후 기대효과와 부각
	사건 수 정점	(여)김진태 (야)서기호	-정밀한 통계자료 및 분석결과 제시
	법원 내부 의견수렴	(야)이상민, 서영교	-종래 상고법원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경과 설명
	대법관 구성 다양화	(야)이춘석, 임내현	-원론적 공감 표명 및 다양화 약속
	위헌론	(야)우윤근, 서기호	-주류 학계 입장, 현재결정 등으로 이미 해결된 논제 강조 -서기호 의원이 지적한 현재결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 설명
상고법원 조직 · 구성	상고법관 임명절차 · 자격	(여)홍일표, 이병석, 김도읍 (야)박지원	-입법 · 행정부 관여 추천위원회 구성 방안 등 제시 -상고법관 구성 다양화 추진
	대법원 조직 내 설치	(야)이춘석, 임내현	-(가칭)상고원 설치 방안 등 검토 가능
상고법원 운영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범위	(야)임내현	-일정형 이상 선고사건, 공안사건 등 추가 검토
	특별상고시 인지세 환급	(여)이병석	-특별상고비용 국고부담원칙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 -그 외 비용최소화 방안 검토
기타 방안 등	대법관 증원	(야)서기호	-선진사법국가사례 강조
	상고허가제	(여)김도읍	-상고법원안이 한국형 상고허가제
	막말 등 제도 개선	(여)김진태, 이한성	-그간의 제도 추진경과 설명 -향후 지속적인 개선 노력 약속



2) 반대 의원에 대한 다각도의 특별대책 수립

	의원	성향, 접촉·설득 방안 등	접촉 루트
여당	김진태	-소신·정치색 뚜렷 -가장 강한 반대 입장 ⇨ 법무부 설득노력과 병행 -공안전담재판부 설치 등 전향적 검토 입장 표명 -반대의견 고양되지 않도록 설득	-당내; 홍일표, 유승민, 김무성 -중진; 이병석, 정갑윤 -친분; 양형실장, 홍○○, 이○○, 김○○ -사적; 민○○, 정○○
	김도읍	-여당 원내부대표로서, 원내대표단 지시에 잘 따르는 스타일 -상고허가제 주장 ⇨ 상고법원이 한국형 상고허가제로서 현실적 개선책이라고 설득 -1심 형사단독 항소율에 대한 우려 ⇨ 정확한 통계 제시 (합의부에 비해 큰 차이 없음) -찬성 또는 묵인 입장으로 변경 시도	-동료; 권성동 -당내; 유승민, 홍일표 -중진; 이병석, 정갑윤
	이한성	-주장·소신이 강하지 않고 인간성이 좋아 정에 약하다는 평 ⇨ 인적 네트워크 활용한 정서적 접근 -최소한 적극 반대의사 표시하지 않도록 설득 -처장님과의 관계 등으로 찬성 가능성 有, but 원내지도부가 당론 반대 시 설득 곤란 예상	-동료; 홍일표 -중진; 이병석, 정갑윤 -친박; 윤상현 -친분; 처장님
야당	전해철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지대한 관심 ⇨ 원론적 차원에서 다양화 노력 약속 -대법관 증원 주장 ⇨ 現 보수정권하에서 진보인사 진입 사실상 불가능 -법사위 간사로서 법원에 대한 부채의식 활용 (정재청구 불변금지폐지 형소법 개정안 반대, 대법관 임명동의절차 지연 등) -최소한 적극 반대의사 표시하지 않도록 설득	-당내; 문재인, 박범계, 전병헌 -사적; 노○○, 유○○ -예우; 처장님 만찬 등
	서기호	-야당정책연대를 통한 목포 지역구 출마 행보 중 -위헌론, 대법관 증원론 등 제기 ⇨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의 합리적 판단 부탁 -사건증가우려 적다고 주장 ⇨ 사건통계분석 자료 제시 -사실심 충실화 노력 부족 주장 ⇨ 제도개선 경과 및 향후 기대 효과 등 명확히 설명 -본인의 책임용달락 다투는 행정사건 매개로 탄압·투사 이미지 표출 ⇨ 신속한 사건 종결로 국면 전환, 설득의 주도권 확보	-당내; 전해철 -친분; 지원실장, 이○○



3) 소극 찬성 또는 유보 의원에 대한 접촉·설득 전략

	의원	성향, 접촉·설득 방안 등	접촉 루트
여당	김재경 (소극 찬성)	-검찰 출신이지만,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 -최근 법사위 합류하여 상고법원안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을 것으로 예상 ⇨ 공청회에서도 발언 없었음 -반대 논리 등에 경도되지 않도록 공청회에서 표명된 문제제기 등에 대한 설득논리 제공 -타 검찰 출신 의원들에 대한 설득 교두보로 활용	-친분; 기초실장, 김○○, 임○○
	노철래 (소극 찬성)	-비법조인 출신으로 주관 뚜렷하지 않아,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에 좌우될 가능성 높음 -보좌진 조언 이상의 발언하지 않는다는 평 -현 스탠스에서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지 않도록 현상 유지 목표로 설득	-친분; 기초실장
야당	이상민	-사실심 강화, 법원 내부 의견수렴에 큰 관심 ↳ ①추진 중인 사실심 강화 상세내용 제시, ②그간의 내부 의견수렴 경과 설명 -특허사건 관할집중 법안 통과를 위한 공조 유지	-친분; 처장님, 기초실장
	서영교	-대법관 업무 과중에 대한 공론화 부족 의견 ↳ 사건통계 외 대법관 일상 스케치, 구체적인 일화 등 제시 -법원 내부 의견수렴 부족 의견 ↳ 그간의 내부 의견수렴 경과 설명 -법원의 신뢰 회복 노력 주문 ↳ 최근 중앙지법 주차담당직원 문제제기에 대한 후속조치 등 설명	-친분; 기초실장

4) 설득거점 의원 또는 Key man 활용 의원 접촉·설득 전략 ⇨ 반대 목소리 무마 + 우호적 분위기 확산

- ▣ 여야별, 무게감·영향력 있는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입법 필요성 설



명 ⇨ 법사위 회의장에서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는 역할 기대

▣ [여당 설득 거점 의원①] 이병석 의원

● [지위] 4선 중진 ⇨ 당내 영향력 至大

- 포항에 지역구를 둔 국회 부의장 출신 4선 의원 중진으로서, 당내 영향력 뿐만 아니라 법사위 내 영남 지역구 위원(김도읍 의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특히 3. 17. 출범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의원들의 지대한 관심사인 선거구 획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오름 ⇨ 의원들에 대한 입김 더 커질 수 있는 입지

● [공략 Point] 이병석 위원의 관심사 공략 ⇨ 상고허가제 관련 발언에 대한 설득 효과 극대화

- ① 노후화된 대구법원 청사 이전 적극 추진

☑ 2014. 10. 국정감사 이병석 위원 관련 발언

☞ “이번에 대구에 가서 국정감사를 해 보니까 대구법원과 검찰청사가 41년이 넘어 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이 불편은 우리가 불편한게 아니라 사법을 활용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국민과 시민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 대구법원 청사 이전 부지 관련 현황 ⇨ 대구시 협조 필요

☞ 어린이회관 부지 or 남부정류장 or 연화사거리 부지 or 경북도청 후적지
☞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필요

- ② 포항 법원 내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아이템 적극적 발굴 및 제시

▣ [여당 설득 거점 의원②] 김무성 대표

● [지위] 現 새누리당 대표

- 성완중 사태라는 악재 속에서도 4·29 재보궐선거 승리 견인 ⇨ 국정의 중심축으로서 당분간 당내외 영향력 지대할 것 ⇨ 설득에 성공할 경우, 상고법원안 처리의 결정적 전기 확보

● [공략 Point]

- ① 법원에 대한 왜곡된 시각 없고, 사법부 독립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기본적 인식 있는 것으로 보임 ⇨ 상고법원안이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사법권 본연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개선책이라고 설득

☑ 2015. 2. 9. 외신기자간담회 직후 국내 기자들에 대한 발언

☞ 원세훈 2심 판결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상고법원 법률안에도 당초 공동 발의에 참여하였다가, 당대표 취임 후 직위상 이유로 발의 철회한 바 있음
- ② CJ 최대 역점 사업이자 사법부 최대 현안에 대하여, 김 대표의 지위와 위상에 걸맞는 적극적 역량 발휘 부탁 ⇨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현재 상황에서, 지원해 줄 경우 김 대표의 주도적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설득
- ③ 다만, 최근 한명숙 의원 정자범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음 ⇨ 대법원에서 전부무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 설득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접촉 루트]

- ① 친분이 깊다는 홍일표 의원의 추천으로 접촉, ② 당대표 비서실장으로서 사법부와 우호관계 형성되어 있는 김학용 의원을 통해 접촉

■ [여당 설득 거점 의원③] **유승민** 의원

● [지위] 現 새누리당 원내대표

-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권 행사 등 당내 영향력 발휘할 수 있는 지위
- 非朴·非주류로서 당내 계파를 초월하여 여러 의원들과 광범위한 접촉면 보유
- 원내대표 취임 후 약 3달 동안 원만하게 당청관계 및 여야소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평

● [공략 Point]

- ① ‘판사 집안’ 출신으로 기본적으로 법원에 대한 우호적 공감대 보유
⇨ 법조 인맥 등을 활용하여 상고법원의 확고한 지지자로 포섭



- 유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브레인’ 으로 통합 ⇨ 상고법원안에 대한 논리적 설명·납득이 전제되어야 함
 - 한편으로, 가족관계 등을 매개로 동류의식을 자극하는 인간적·정서적인 접근도 병행
- ② 합리적이면서도 소신주의자라는 평 ⇨ 상고법원 우군으로 확보 시, 여당 내 반대 분위기 반전에 큰 효과 거둘 것

☑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인물평

“유 의원은 뒷사람을 보좌해서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절대로 아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 ③ 지역구 관심사 활용

- 유 의원의 지역구는 ‘대구 동구을’로서 신서혁신도시를 끼고 있는데 인근 ‘K2 군사공항’ 이전, 공기업 유치 등을 포함한 혁신도시 발전 사업이 지난 총선 주요 공약 ⇨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에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 있음

■ [야당 설득 거점 의원①] **우윤근 의원**

● [지위] 現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친 법원 성향이긴 하지만, 원내대표의 직위로 인하여 상고법원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동료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지 않고 있음

● [공략 Point]

- 5월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 예상 ⇨ 이르면 4월 국회, 늦어도 6월 국회부터는 보다 행동반경을 넓혀 줄 것을 설득

■ [야당 설득 거점 의원②] **이춘석 의원**

● [지위] 예결위 간사 및 전략홍보본부장

- 19대 후반기 예결위 간사에 이어 2015. 2. 당 전체 전략의 기획 및 홍보를 총괄하는 자리인 전략홍보본부장에 임명
- 법원과도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공략 Point]

- 평소의 친분관계 이용
- 울사 출신으로 법원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어, 상고제도 개선의 시급성과 상고법원안의 취지, 기대효과 등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기에 유리

- 평소 법원과 지근 관계를 유지해 온 점, 동료 의원들 사이에 법리에 밝고 합리적이라는 인식 형성되어 있는 점도 장점

▣ [야당 설득 거점 의원③] **전병헌 의원**

- [지위] 3선 의원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 국정홍보처 차장 등을 거쳐, 노무현 정부 시절 17대 국회에 최초 입성
- 2013. 5.부터 2014. 3.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면서, 많은 의원들로부터 신망 얻음 ⇨ 2015. 2.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를 예상 하였으나 3위로 당선된 것에 아쉬워했을 정도
- 범친노로 분류되는 정세균계 소속 ⇨ 문재인 대표와 가깝고, 전해철 의원 과도 친분이 두텁다는 소문

- [공략 Point] ⇨ 1소위 심사 등에서 야당의 키를 쥐고 있는 전해철 의원 설득거점으로 활용

- ① 사법부 현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우호적인 태도 견지 ⇨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시급성 등 강조하여 설득

☑ 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관련 3. 19. 의원총회 발언

☞ "야당이 어느 정도 입장을 밝혔으니, 이제 청문회를 열어 국민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최근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 ⇨ 민원 해결될 경우, 이를 매개로 접촉·설득 추진

▣ [야당 설득 거점 의원④] **신임 원내대표**

- 5. 7. 야당 원내대표 선거 예정



- 4·29 재보선 참패, 당내 계파 분열로 **혼전 양상**
- 비노 진영의 유력 후보로 박지원계의 지지를 받던 박기춘 의원이 4.27. 불출마 선언 ⇨ 5명으로 후보 압축

	선수 및 지역	계파	비고	상고법원 발의 여부
이종걸	4선 안양만안	김한길계	3번째 도전	X
최재성	3선 남양주갑	정세균계 (범 친노)	지난 원대대표선거 1차 3위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 변수	○
김동철	3선 광주 광산갑	김한길계 겸 손학규계	영남 당대표 호남 원내대표론	○
설훈	3선 부천원미을	동교동계 겸 김근태계	재보선 참패 후 '저격수' 선명성 부각	X
조정식	3선 시흥을	손학규계	계파색 없어 친노 지원 가능성 있음	X

- 1차 투표 및 결선투표 단계에서 **합중연형**으로 결론 날 것으로 예상
- 안철수 전 대표의 원내대표 합의추대론 제기되었으나, 실현 가능성 낮음
- **신임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권 등 당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 할 것으로 예상 ⇨ **선출 직후 신임 원내대표 성향 등 분석하여 상고법원에 대한 설득 필요**
- **상고법원 법률안 발의 참여 여부 등 상고법원에 대한 입장 확인**
- **찬성 입장인 경우** ⇨ **확실한 우군으로 포섭, 설득의 지렛대로 활용**
- **유보·반대 입장인 경우** ⇨ **검찰·법무부의 반대 논리에 경도되기 전에 신속한 설득 착수**

4. 공청회 이후 6월 임시국회까지의 대응 전략

▣ [전략 1] 의원별 맞춤형 설득 전략

- 공청회에서 부각된 **상고법원안의 긍정적 요인은 더욱 확산시키고,**



일부 오해 등에서 비롯된 부정적 입장에 대하여는 인식 전환 노력 병행

- 상고법원의 설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의원들 관심사항별 맞춤형으로 상고법원 법관의 임명 절차, 필수적 대법관 심판 범위, 구체적인 조직 및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
- 검찰측 등의 대법관 증원 주장에 대해서는 상고허가제가 원칙적인 모습임을 강조하는 맞불 작전 추진

▣ [전략 2] 공세적·적극적 여론전 ⇨ 전방위적 **對언론 홍보 추진**

- 최대 메이저 언론인 조선일보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 방안 추진
 - 지상 좌담회 등
- 진보 인사의 신문기고 ⇨ 상고법원 취지 공감 + 일부 법안 보완 필요
- '상고법원 설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정책연구용역결과 기사 게재
 - ⇨ 구체적 수치 제시
- 상고법원안에 대한 대안 시리즈 ⇨ 법률신문 기획기사로 추진
- '상고법원 도입 이후 달라지는 운영모습들' 특집 기사 게재 ⇨ 구체적 사례 중심
 - ex) 충실한 재판을 위한 변론확대, 전문재판부에 의한 전문성 강화, 판결이유 의 상세한 기재 등

5. 6월 임시국회 대응 전략

▣ ① [1소위 대비] ⇨ 여러 수용가능한 **대안의 사전 정책 결정 필요**

- 현재 분위기상 상고법원안의 원안 통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 ∴ 1소위는 원칙적으로 만장일치에 의해 법률안 통과, but 반대의견 의원들 대거 1소위 포진



- 여러 가지 대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수용 가능한 대안에 대하여 사전에 정책결정을 받아들 필요 있음

- ex) (가칭)상고원 형식, 상고법원에서 형사사건 관할 제외, 대법관 임명 숫자의 정략적 축소

☑ 법률신문 3. 16.자 사실 '상고법원 논의에 돌파구는 없나'

☞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공판사건은 상고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관할하는 방안, 상고법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방안, 상고법원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 방식으로 대법원판사제를 도입하거나 상고법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대법원 상고부 형식으로 두는 방안, 상고법원 설치시 대법관을 축소하는 방안 등의 대안이나 타협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1소위 논의 경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

▣ 2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의결 사항 입법 추진

- 6월 임시국회에 이르기까지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법사위원들에게 사법부의 의지를 어필할 필요 있음

6. 9월 정기국회 대응 전략

▣ 6월 임시회까지 드러난 의원들 입장 최종 분석 ⇨ 최후의 총력 설득전 수행

- 조건부 반대 의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
 - 반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진지한 숙고 외양 표출
 - 내부 정책결정을 거쳐 대안의 보다 구체화된 모습 설계·표방
 - 최후의 협상카드라는 점을 부각하여, 반대 의원들의 심리적 부담감 극대화
- 무조건적 반대 의원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 강구
 - 철저한 무시 및 고립화 전략 ⇨ 1소위에서 위원장, 간사 등 협조를 구해 반대의견 부기하고 통과시키는 전략 등 검토
 - 법원에 대한 지나친 주관적 감정의 발로로 판단되는 경우, 여러 우회적 방법으로 법사위원장 등 중진 의원들에게 어필 ⇨ 동료 의원들을 의식한 태



도 변화 유인

● 찬성 의원들의 주도적 역할 주문

- 홍일표, 이병석, 박지원, 우윤근, 이춘석 등 법사위 내 신망받고 영향력 있는 의원들에게 전방위 협조 요청

■ 주도면밀한 국정감사 준비

- 국정감사 종료 직후 상고법원안 심사를 위한 1소위 개의 가능성 높음 ⇨ 국정감사가 상고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 국정감사장에서 사실심 충실화 등 각종 제도 개선 노력의 결과와 구체적 성과가 종합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필요
- 자칫 국정감사가 특정 판사의 개인 비리나 돌출행동, 명백한 업무상 과오 등으로 Negative Hearing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내부 단속에 유의

■ 홍보전략 [플랜 B]에 따른 하반기 홍보 계획 실행

● 9·10월 맞춤형 홍보전략 실행 착수

- 정기국회에서의 통과가 낙관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홍보 실시
- 다른 정치 현안 등으로 법안 심사가 늦어질 경우, 국회의 무관심을 질타하는 기고문 등 게재

● 조선일보 등 최대 메이저 언론을 활용한 다각도의 홍보 실시

- 변호사 등 상대 설문조사 실시, 사내칼럼 게재 등

● TV, 라디오 등 영상 매체, 블로그·유튜브·페이스북 등 쌍방향 소통 매체를 통한 입체적·이미지 홍보 병행

● 다각화·다층화된 전방위 홍보를 통해 일반 대중 및 전문가들의 우호적 여론 형성 ⇨ 법사위 법률안 심사에 유리한 입법 분위기 조성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1. 취지

- 상고제도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므로, 제도 개선은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바탕되어야 함
- 상고제도 개선은 이미 오랜 기간 수차례 논의되었으나 번번이 충분한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음 ⇒ 더 이상 상고제도 개선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논의를 매듭짓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함
-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최고의 언론사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쟁점 부각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므로, 상고제도 개선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앞두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 요청사항 개요

- 법률가(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 전문가 지상좌담회
- 사내 칼럼(논설위원 등)
- 기고문

3. 설문조사 요청

가. 요청 배경

■ 상고법원 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화·수치화된 표지(標識) 확보

- 서울변회, 대한변협의 과거 설문조사가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상황

서울변회	대한변협
조사시기 : 2014. 8. 21. ~ 9. 11.	조사시기 : 2014. 12. 1. ~ 28.
①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은? ①찬성 54.8% ②반대 42.9%	① 선호하는 개선 방안은? ①대법관증원 51% ②상고법원 설치 31% ③이원적 구성 14%
② 심불폐지 전제한 상고법원에 대한 의견은? ①찬성 57% ②반대 37.3%	② 상고법원안에 대한 의견은? ①찬성 15% ②심불폐지 전제 찬성 44% ③반대 38%

- 발의된 법안에 대한 찬반 설문이 아니라, 조사 당시 논의되던 상고법원 방안에 대한 설문이었음 ⇨ 구체적인 법률안 발의 후 국회 논의 단계에서 계속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확인이 필요한 상태

■ 기대 효과

- '전문가집단은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반대논리 해소
- 설문조사를 통해 긍정적 여론 조성
- 법조계 내 여론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소위 등에서 제시된 대안에 대한 해결 방향 제시

나. 구체적 시행 방법

1) 조사방법

○ ① 이메일 조사 방안

- [장점] 다수의 변호사 참여로 결과 신뢰도 확보, 비용 저렴
- [단점] 상고법원 반대집단의 조직적 참여로 결과 왜곡 가능성

○ ② 전화 조사 방안

- [장점] 결과 왜곡 우려 적음
- [단점] 낮은 응답률로 표본수 확보에 어려움, 본인 여부 확인 곤란, 법안 내용 설명 어려워 홍보 효과 없음, 스팸성 전화로 받아들여 부정적 답변 가능성

○ ③ 대면 조사 방안

- [장점] 결과 왜곡 우려 적고, 조사 대상자를 유리한 방향으로 선정 가능, 소극적 지지자들의 설문참여 가능성이 다른 방안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단점] 조사 사실 자체가 과도한 이목을 끌 가능성, 비용 과다

○ 검토 ⇨ ①안 이메일 조사

- 대한변협, 서울변회 등이 실시한 통상적인 조사방법임
- 결과 왜곡 가능성은 설문문항 설계, 조사기간 조정 등의 방법으로 방지 가능

2) 이메일 주소 수집 방안

- 대한변협 발간·배포 회원명부의 이메일 주소 활용

3) 조사기간

○ 응답률 10% 도달하는데 2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대한변협 조사시 28일, 서울변회 조사시 22일 소요, 각 응답률 10%

- ※ 응답자 수는 최소한 대한변협 응답자수 1,572명보다 상회할 필요

○ **고려할 요소**

- 설문조사가 시작되면 ①설문의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 ②**반대집단에 대한 설문참여 또는 설문거부 독려**, ③**맞대응 설문조사 등 대응 우려** ⇨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 설문조사는 최대한 짧게, 조사 완료시 바로 결과 공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조사시작 시에 미리 조사기간을 공지하지 않는 방안**

- 일정한 응답 인원 확보되면 중단하는 방식(대한변협 방식)

다. 조사 주체

■ **[1안] 조선일보사(실제 조사는 전문업체가 수행)**

○ **장점**

▪ 이해관계 없는 언론사에 의한 공정한 조사 ⇨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법조계의 관심과 긍정적 의견 확대 가능

○ **단점**

▪ 변호사 단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기 어려우므로 참여율 저조할 우려

■ **[2안] 서울변회(자체 설문조사 시스템 이용)**

○ **장점**

▪ 서울변회의 참여 독려 가능하므로 참여율 높일 수 있음

○ **단점**

▪ 설문조사 결과 작년에 비해 좋지 않으면, 집행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검토 → 1안**

▪ 최고 언론사에 의한 조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조사 결과의 영향력·파급력 강화

▪ 서울변회 등을 통하지 않은 적정한 참여 독려 방안 적극 검토

라. 설문 문항(안)

■ **기본 방향**

○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안'이 아닌 국회의원 168명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형태**

○ 각 문항의 구체적 내용과 배열 순서 등은 설문조사 전문가와 추가 협의

[설문 예시]

※ 상고법원 개선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168명이 상고법원 도입 방안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법원 외 별도의 상고심 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함
- 대법원이 필수적으로 심판하는 사건을 법률도 별도 규정하고, 나머지 사건은 전부 대법관이 심사하여 대법원 사건과 상고법원 사건으로 분류함
- 사건 심사 기준 : 법령해석통일 및 공적 이익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은 대법원이, 그렇지 않은 사건은 상고법원이 심판함
- 사건 심사에서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 관해 필수적 변호사 대리 제도를 도입함
- 상고법원에는 민사, 형사, 행정, 특허 등 전문재판부를 두고, 부장판사 없는 대등재판부로 운영하며, 외부 법조경력자도 상고법원 판사로 임명함
- 심리불속행제도는 폐지함

1. 귀하는 현행 상고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모르겠다 ④ 아니다

2. 법률안은 심리불속행제도 폐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모르겠다 ④ 아니다

3. 상고법원이 도입이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모르겠다 ④ 아니다

4. 상고법원 판사의 임명에 관하여 사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및 행정부도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모르겠다 ④ 아니다

5. 법률안은 일부 대법원 상고사건에 대하여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 도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찬성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모르겠다 ④ 아니다

6. 귀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에 찬성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모르겠다 ④ 아니다

[1] 귀하의 변호사 사무실은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 ①서울, ②경기, 인천 ③강원 ④충북, 대전 ⑤대구 ⑥부산, 울산, 경남, ⑦광주, ⑧전북, ⑨제주

[2] 귀하의 법조 경력은 몇 년입니까?(또는 연수원 기수)

- ①5년 미만 ②5년 이상 10년 미만 ③10년~20년 ④20년이상

■ 결과 편차 보정

○ 인적 사항 확인 문항 ⇨ 지역 및 경력 관련

○ 객관적 결과를 위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경력 등 특정 변호사 그룹이 기타 그룹보다 적극 참여하여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 방지 필요 ⇨ 설문조사 결과의 통계적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활용

- (예시) 전국 평균 응답률이 10% 수준(약 1,500명)임에도 특정 지역 변호사의 약

50%인 300명이 반대 취지로 대거 참여한 경우 ⇨ 특정 지역 변호사 응답자 300명 전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전국 변호사 중 그 지역 변호사의 비율(가령 4%)에 해당하는 약 60명(=1,500×4%) 부분만 반영하거나 다른 지역 변호사의 응답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등

4. 지상 좌담회 요청

가. 시기와 형식에 대한 의견

-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 공표와 동시 게재하는 방안 요청
- 논설위원이 참석자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좌담회를 이끌어 가는 형식

나. 참석자¹⁾

■ 사회 원로

- 오○○(전 서울대 총장), 김○○(한국법학원 원장, 전 대법관), 부○○(영산대 총장), 이○○(전 양형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교수), 배○○(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실무 원로

- 이○○(전 대한변협 협회장), 권○○(전 법무부장관), 권○○(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 재판소 재판관, 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다양화 인사²⁾

- 전○○(전 양형위원회 위원장, 전 헌법재판관), 전○○(전 대법관), 박○○(인하대 법전원 원장, 전 대법관), 차○○(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하○○(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다. 좌담 내용(안)³⁾

■ 도입

- 상고법원 관련 법안 제출 및 법사위 논의 상황 소개

■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 공통 인식

- 대법원의 상황 + 글로벌 스탠더드
- 국민의 불이익 방지 불가
- 제도 개선 공감대 형성 확인 : 법사위 공청회 및 설문조사 결과 소개

1) 일용 3명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나 추가 검토 필요함

2) 참석자 3명 모두 남성의 사회 원로만으로 구성될 경우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입장에서 상고법원에 대한 찬성 의견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함

3) 구체적인 논의 자료 사전 제공

■ **상고심 개선의 역사 : 모두 실패 → 근본적인 대안 필요**

- 기존 제도 도입 역사 및 한계
- 참여정부 논의 : 고법상고부
- 이명박 정부 논의 : 대법관 증원론 폐기

■ **상고법원안 소개**

- 상고법원안 논의 배경 및 법률안의 주요 내용
- 상고법원 도입의 기대 효과
 - 신속 : 설문조사 결과 인용
 - 충실 + 전문 + 친절한 사법서비스 + 심불 폐지
 - 전원합의체 활성화 : 정책법원 기능의 효용

■ **쟁점 1. 위헌론 주장**

- 학계 다수설과 헌재 결정
- 외국 사례 소개

■ **쟁점 2. 상고법원 판사 임명**

- 문제제기의 핵심
- 대안 논의 - 상고법관 추천위원회
- 외국 사례 소개

■ **쟁점 3. 대법관 증원의 한계**

- 전원합의체 활성화 방향에 역행 :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상황
- 헌법 예정 사항 아님
- 인사청문회의 현실적 문제

■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사실심 충실화는 법조 3륜의 공통적인 책임이라는 점 인식 필요
 - 법원 : 사실심 충실화에 대한 책임감
 - 검찰 : 객관의무 + 공정성 강화 → 충실한 사실심 구현의 협조의무
 - 변협 : 충실한 사실심 구현의 핵심 주체
-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할 필요
- 상고심 제도 개선 구현 + 불필요한 상고 절제 → 선진 사법시스템 구현

■ **결론 : 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국회의 책임 강조**

- 동일한 논의 반복 역사

-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신뢰 기준 외면하는 방향의 위험성
- 광복 70주년 등 역사적 의미에 비추어 논의 종결 필요

5. 사내 칼럼과 기고문 게재 요청

가. 사내 칼럼

■ 설문조사 진행 기관으로서 조사 결과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시하는 취지

-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설문조사 포함) 종합 정리 + 대안 방향 제시 +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 확인

나. 기고문

■ 설문조사 결과 및 지상좌담회 논의를 보고난 국민 입장 대변

- 상고제도 개선의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확인 계기 + 국회 논의에서 최종 결론 기대

■ 후보자

- 좌담회 후보자 중 실제 참여하지 않은 영향력 있는 원로급 인사 등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검토

2015. 5. 20.

1. 오전 TBS “고○○의 열린 아침”

가. 프로그램 개요

- 시간 : (월~금) 오전 7시 ~ 9시
- 프로그램 구성(30분 단위 총 4부로 구성됨)
 - 주요뉴스 브리핑
 - 이 한마디
 - 경제뉴스 브리핑
 - 열린 인터뷰 1, 2 (오전 8시 10분경 시작) → 출연이 적절함
 -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1분 상식
 - 뉴스 돋보기
 - 미니 인터뷰

나. 열린 인터뷰 개요

- 전화 인터뷰 방식
- ‘열린 인터뷰’ 기존 출연자
 - 대부분 : 전.현직 국회의원, 단체장, 정치인
 - 기타 :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육군본부 정책위원,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대학원장, 부총장, 보건복지부 차관,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 대부분 기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중량감 있는 인사가 출연
 - 단순한 관련 분야 교수 등은 거의 없었음



다. 상고법원 관련 기존 인터뷰

▣ 2014. 11. 18. 홍일표 의원 출연(약 12분)

- 상고법원의 필요성 : 국민 3대 불만, 접수 추이, 외국과 비교
- 하급심 충실화와의 관계
- 상고심의 장기화
-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관계 : 업무 분담, 상고법원 법관의 경력
- 상고허가제와의 비교
- 대법관 증원의 문제점 : 전원합의체 불가능

라. 기획안

▣ 1안

- 시기 : 6월 중순경¹⁾
- 출연진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중량감 있는 법조계 · 학계 인사
- 주요 쟁점
 - 상고법원의 개념
 - 상고심 제도 개선의 필요성 : 공감대 형성된 상태
 - 상고법원 도입 전후 비교 : 사건 심사 ➔ 분류 기준 ➔ 분담
 - 심불 폐지 / 전합 증가 / 전문재판부 설치 ➔ 국민 위한 제도 (경제적 효과)
 - 선진국과의 비교 : 상고허가제
 - 상고법원안 도출 배경 : 상고허가제 실패 / 모든 사건의 충실한 상고심 구현
 - 관련 기관 의견
 - 변호사단체 여론조사[심불 폐지 전제 59%(변협) 및 57%(서울) 찬성] 및 성명
 - 디지털 쉐전 결과 (6:4)

1) 사법정책연구원 주최 상고제도 개선 세미나 일정 고려



- 검찰 : 반대 아님 → 중립 또는 신중 검토

- **국책연구기관 중심 상고제도 개선 세미나 결과 및 논의 내용**

- 대법관 증원 : 전합 불가 + 인사청문회 문제 (소수 증원 시 효과 없음)
- 6월 국회의 역할 강조

-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의 긴 역사 → 끝맺음 필요 → 국민적 요청

▣ 2안

- 시기 : 9월 ~ 11월
- 출연진 : 행정처 국장, 총괄심의관 이상의 중량감 있는 인사
 - 법안 통과를 위한 결정적 국면에서 출연 필요
- 주제 : 상고법원 관련 법안 심사 시 제기된 주요 논점
 - 국회 논의 과정 반영 필요

2. 저녁 “KBS 공감토론”

가. 프로그램 개요

▣ 시간 : (월-금) 19:20 ~ 20:56 (95분)

▣ 진행 : 노○○ 경희대 교수(헌법, 언론법)

- 서울공고, 경희대 법대 졸업, 사우스웨스턴대 법학박사, 미국변호사
- 국민일보 논설위원,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

▣ 요일별 프로그램 구성

요일	주제		패널
월	<주간정치포커스>	2-3개 주제	중앙일보 김○ 논설위원, 경기대 박○○ 교수, 국민대 홍○○ 교수, 영남대 김○○ 교수
화/금	핫이슈 전문가 토론회	1개 주제	교수, 연구원 박사, 언론사 기자, 각종 단체 회장 등 4명
수	<직격인터뷰>	여야 중진 정치 인물	한국정치아카데미 김○○ 원장 문화일보 이○○ 논설위원
목	<주간경제포커스>	2-3개 주제	연세대 김○○ 교수, 한양대 이○ 교수, 건국대 최○○ 교수, 희망제작소 이○○ 소장



나. 화/금 토론회 프로그램 개요

■ 패널 4명

- 찬성:반대 패널을 2:2로 구성함

■ 프로그램 구성

- 초반 프로그램 소개 3분 이후 대략 전반 45분 / 후반 45분 진행
- 중간 휴식 1분(프로그램 소개)
- 두차례(후반 시작 직후 / 마무리 발언 직전) 청취자 의견 소개
 - 사전 녹음 인터뷰, 전화 연결, 문자 소개, 인터넷 실시간 게시판 의견 등 ⇨ 찬반 의견 1:1로 소개함

다. 상고법원을 주제로 한 방송의 장, 단점 검토

■ 장점

- 퇴근 시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음
- 장시간 토론 ⇨ 상고법원 내용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소개 가능
-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토론자에게 유리함(후반부에서는 토론이 느슨하게 진행되므로 새로운 이야기꺼리를 생산해내며 충분히 발언할 수 있음)
- 진행자가 적절하게 진행하는 경우 상고법원 이외 법원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음

■ 단점

- 상고법원의 도입 배경이나 필요성 등은 전문적 내용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 반면, 반대론자의 선동적인 내용(대법원 권위 유지, 고위법관 자리늘리기, 전관예우 강화 수단, 4심제, 대법원 재판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반함, 의원입법 문제 등)은 쉽게 이해될 수 있음
- 전관예우 등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 비판으로 옳아갈 가능성 ⇨ 법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상고법원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



라. 기획안

▣ 방송 시기 ⇨ 6월 초, 증순경(국회 소위 논의 직전)

- 1안 6. 9.(화) → 2안 6. 5.(금)

▣ 패널 후보

	찬성	반대
교수	정○○, 김○○, 이○○	장○○, 이○○
변호사	신○○, 이○○, 이○○, 홍○○, 이○, 유○○, 이○○, 김○○, 변○○	민○○

- 토론시간을 고려할 때 적절한 패널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 있음
- 반대 패널에 대하여 의견을 내기 곤란하고, 제작진에서는 이○○, 장○○, 임○○, 이○○ 교수를 섭외하기 쉬움

▣ 내용(안) - 세부 토론 항목

- 상고법원안 내용 및 논의 현황 소개(사회자)
- ① 상고심 운영 현황(강조할 부분)
- ② 과거 우리나라 상고제도와 개선 논의
- ③ 외국 제도와의 비교
- ④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 ⑤ 상고법원 판사의 임명 절차
- ⑥ 4심제
- ⑦ 전원합의체의 의미와 중요성, 대법원 다양화
- ⑧ 상고법원 도입으로 바뀌는 점(효과)
- ⑨ 사실심 충실화
- ⑩ 직역별 여론(법원, 검찰, 변호사)
- 마무리 ⇨ 상고심 운영 현황을 다시 언급, 논의 결론 시급함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법무부 설득 방안

2015. 5.

기획조생실

I. 검토 배경

▣ 상고법원 입법 성사를 위하여 **법무부의 조속한 협조 견인 필요**

- 법사위 검찰 출신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영향력 무시할 수 없음
 - 특히 법사위 1소위 소속 김진태, 김도읍 의원 등은 (중략)
- 국회에서의 본격적 법률안 심사에 앞서 법무부 접촉·설득 추진

☑ **입법추진 향후 로드맵**

▶ 6월 임시국회 법사위 1소위 논의

▶ 9월 이후 정기국회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

※ 종전 예에 비추어, 하반기 정기국회 법률안 심사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10월 말경부터 개시 예상

▣ 그러나 여전히 법무부는 **공식적 신중검토·사실상 반대** 입장 고수

- **對사법부** ⇨ 여러 상고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One of them)로 상고법원안 취급
- **對국회·BH** ⇨ 의원들 상대로 입법방해 전략 구사, 반대 논리 제공

▣ 법무부의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후의 충격요법**을 강구해야 할 상황

- 법무부의 상고법원에 대한 입장·최대 현안·관심사 등 분석
- 이를 토대로 법무부 접촉 주체, 시기, 협상 카드 등 설득전략 수립



II. 법무부 현황 및 향후 전망

▣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 ⇨ 이중 플레이

- 표면적 ⇨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 But 상고법원안에 대하여는 신중검토 의견

☑ 4. 20. 법사위 상고법원 공청회 장○○ 검사 발제문 일부

「상고심 재판 지연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고법원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거나 이미 시행했던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실질적 ⇨ 확고한 반대 입장
 - 법원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심리 발동 ⇨ 각종 궤변적 반대 논리 구성·유포
 - 기본적으로 타 기관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수수방관적 태도 견지
 - 다만, 대법관 증원론에 대하여는 진보 세력의 최고법원 진출을 우려하는 문제인식 가지고 있음

▣ 최근 내부적 현안·관심사 등

● 검사장 자리 확대 ⇨ 법무부·검찰의 최대 관심사

- 인사적체에 따른 내부 불만 증폭의 주요 원인
-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상고검찰청 신설은 매력 없음 ⇨ ∴ 검사장 최대 2자리 가량 불과

● 디지털 증거 관련 법률 제·개정 또는 판례 변경

☑ 2015. 3. 19. 법무부장관 취임 2주년 기념 인터뷰

“안보저해사범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증거법상 특칙이나 예외를 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형사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국민일보 2015. 4. 3.자 ‘형사소송법 개정 본격 착수’ 기사

☞ 검찰, 법원의 엄격한 잣대에 위기 의식... 작년 11월 ‘증거법 연구회’ 조직, 법 개정 추진하기까지...



● 중점 검찰청 설치·운영

- 지역적 특수성 등에 따라 특정 유형의 수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지방 검찰청 지정 ⇨ 수사의 전문성·효율성 추구
 - ex) 서울남부지검 ⇨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 서울서부지검 ⇨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 울산지검 ⇨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 BH·정치권·재계와의 관계 등 외부 상황

● BH와 친밀관계 지속

- 통진당 해산결정의 후광 여전 ⇨ 공로 인정에 따른 신뢰관계 확고
- 비서실장 교체 되었으나, 비서실의 親검찰 기초에는 변함 없음 ⇨ 다만, 성완중 前 의원 자살 사건으로 인해 내부 역학구도에 변화 요인 발생

● 정치권·재계에 대한 대대적 사정 착수하였다가 역풍 직면

- 재계·자원외교·방산비리 수사 ⇨ BH發 사정 정국의 손발 역할 수행
- 前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 잠재우기 위해 가시적 성과·명분 쌓기 위해 고심하던 중 성완중 사건 발생

■ 성완중 前 의원 자살의 영향 ⇨ BH·법무부·검찰에 대한 죽음의 역공, 메가톤급 후폭풍 발발

● 성 前 의원이 폭로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사 피할 수 없는 상황

- 4. 12. BH 입장 발표에 맞춰 신속한 특별수사팀 구성 ⇨ 엄정한 수사 의지 표명
- 자칫 철저한 수사 노력 보이지 않을 경우, 검찰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

☑ 2015. 4. 12.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긴급 기자회견

“그동안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점은 인정한다... 이번에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해 불명예를 씻을 수 있다면 더 큰 소득이 될 것... 국민 앞에 의혹을 다 씻을 수 있도록 외압이 없도록 하겠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면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



- 야당 일각에서뿐 아니라, BH와 여권에서도 특검 수사 필요성 언급
 - BH·여권은 특검으로 조기에 수사 종료하고 이슈를 전환시키는 것이 내년 총선대비 정국 구상에 유리하다는 생각
- BH·법무부 사정 라인에 대한 책임론 부상
 - 사정 정국의 밑그림 그린 우병우 민정수석의 입지 좁아질 것
 - [우 수석의 데자뷰] ⇨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1과장 재직 시 노무현 전 대통령 직접 수사 후 20여일 만에 노 대통령 자살 사건 발생
 - 검찰 수사팀의 실책 지적 목소리 ⇨ ① 별건·저인망식 수사(자원개발 국 고지원금 횡령 혐의 → 회사돈 횡령·분식 혐의), ② 압박용 계좌추적·반복적 압수수색, ③ 성 의원에 대한 신병관리 부실(긴급체포 미실시), ④ 선부른 폴리바게닝 시도
 - 다만, 아직까지 야권은 BH 공격에 집중하고 있고, BH·여권은 검찰 문책의 여력 없는 상황
- 정책 결정의 중심 축 ⇨ 주무 장관인 법무부장관으로 이동
 - 수사 대상자로 지목된 신임 비서실장의 장악력 및 민정수석의 입지 약화에 따른 여파
 - VIP의 신뢰 여전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믿고 수사를 맡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법무부장관에게 보다 힘을 실어줄 가능성 높음
 -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검찰의 수사방향 예의주시 ⇨ 일단 검찰이 수사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칼자루를 쥔 형국
- 사법부에 미칠 파장은 단선적 예측 곤란
 - [호재 가능성] ① BH·법무부가 위기 타개를 위한 보험용으로 사법부를 우군으로 확보하고자 시도할 가능성, ② 특히, 검찰 개혁으로 분위기 확산되는 데 촉각 곤두세우며 사법부와의 공조 필요성에 무게 둘 수 있음
 - [악재 가능성] ① 민정수석의 입지 약화로 법무부장관의 목소리 더 커질 가능성, ② 친박계 의원 등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에 총력 기울여야 할



상황 ⇨ 상고법원 등 사법부 현안에까지 관심 기울일 여력 부족

☑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의 관계

- ▶그다지 원만한 관계 아니라는 게 중론
 - [민정수석] 연수원 19기 특수통, [법무부장관] 연수원 13기 공안통
 - 황 장관 취임 후 첫 검사장 인사에서 우 수석 탈락하여 검찰 사직
 - 민정수석, 법무부 상신 인사안에 대하여 과도한 영향력 행사
- ▶민정수석이 장관을 제쳐두고, 김○○ 대검 차장을 통해 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에게 직접 BH 지침 전달한다는 소문

III. 법무부 설득의 기본 방향 ⇨ 강온(強穩) 양면 설득전략 에 따른 Big Deal 추진

▣ 상고법원안은 다른 현안과 비교불가의 절체절명 과제

- CJ 최대 역점 사업이자 사법부의 가장 중차대한 추진 과제 ⇨ ∴
입법 실패는 ① 대외적으로 사법부 위상 추락, ② 대내적으로 CJ의 리더십 상실이라는 최악의 위기상황 초래
- 심급체계 전반에 관한 리모델링 정책 ⇨ 신속·적정한 재판권 행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제도개선책
 - [1심] 쟁점의 조기 현출, 쟁점 중심의 충실 심리 및 실질적 증거조사
 - [2심] 심리범위 적정화
 - [3심] 대법원의 정책법원化 + 상고법원의 개별적 권리구제 기능 수행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강화

▣ 그러나 법무부의 비협조적 태도는 상당히 고착되어 있는 상황

☑ 법무부장관, 4. 8. 처장님과의 만찬 자리에서의 발언

“상고법원 도입은 일선 검찰청의 폭넓은 의견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4. 15.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행정처 기조실장·정책실장 회동 분위기

- ▶[행정처] ①상고법원안에 대한 대승적 협력 요청, ②법무부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약속
- ▶[법무부] ①진지한 모습·발언 결여, ②무성의하게 상고법원안의 문제점 및



각종 대안 나열, ③ 법무부는 검찰 대변 조직 아니라는 반응
☞ **진술한 의견 교환 실패**

● [원인 분석]

- ① 법원에 대한 반발·견제 심리 확산 ⇨ 상고법원 도입이 사법부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쉽게 동조해 줄 수 없다는 얄은 발상
- ② 상고법원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現 입법추진 환경에 대한 자체 판세 분석
- ③ 실리적으로 상고법원안이 법무부·검찰에 가져다 줄 이득이 없고, 그와 맞바꿀만한 등가치 현안도 없다는 인식

■ Big Deal을 통한 국면 타개 시도

- 법무부가 현재와 같이 뚜렷한 의견 제시 없이 버티기로 나올 경우 ⇨ 원론적 수준의 호혜관계 조성 요청이나 감성적·정서적 관계 정립 노력으로는 성과 기대 불가
- 상고법원안 추진의 필요성·시급성을 전면에 내세운 강온(強穩) 양면 설득전략 추진 필요
 - [압박] ① 상고법원안에 대한 협조 없을 시, 양 기관의 관계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점, ② 법무부가 막후에서 對국회·BH 입법방해전략 구사해 온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 등 엄중 경고
 - [회유] 법무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Deal 가능한 유력한 카드 제시 ⇨ 전면 관계 단절보다는 협상 타결이 유리하다는 선택적 착수 유도

IV. 구체적 설득 전략

1. 협상의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 영장제도의 대대적 개혁 공론화

- 법무부·검찰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장제도의 변화를 매개로 활용 ⇨ 수사업무와 직결되어 있어,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 ①체포·구속영장제도의 일원화 등 추진

- 체포는 쉽게, 구속은 엄격히 통제하는 인신구속제도 수립 표방
- 2008년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뚜렷한 개선 논의 부재 ⇨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 도래하였다고 공표

■ ②디지털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절차적 통제 방안 마련·통보

- 현재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사실상 일반영장처럼 운용되는 결과 ⇨ 검찰의 광범위한 별건 수사과 이를 통한 영향력 확대 초래 ⇨ 이에 대한 엄격 통제를 강구하는 방안 강구
 - [ex] 수색영장·압수영장의 분리 발부 방안, 압수수색 방법의 사전 제한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 방안, 압수물 반환·폐기 의무 명시 방안,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실질화 방안, 압수목록의 교부 의무 강화 방안 등
-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들이 연구에 착수하여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5. 18. 수도권 소재 영장전담법관간담회 개최하였고, 이후 권역별 후속 간담회 추진 예정 ⇨ 간담회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 방안을 적절한 시점에 검찰에 통보
- 언론에도 절차적 통제 방안을 공표하여 공론화 ⇨ 성前 의원 수사과정에서의 광범위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음

2. Big Deal을 위한 협상 카드

가. 사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카드

1) 수사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영장제도 개선 방안 제시

■ ①체포·구속영장제도 개선



- [정책 타이틀] ⇨ 수사 효율성 제고 및 피의자 인권 보장에 기여하는 新인신구속시스템 구축
 - 법무부가 제도 개선의 주체로 나서기에 적합한 정책 과제
 - 성완종 리스트 수사 종료 후 불거질 수 있는 검찰 책임론을 희석시키거나 그에 대한 자체 개혁 방안으로 꺼내 들 수 있는 아젠다
 - 수사 편의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 간 조화로운 균형을 도모한다는 제도 개선의 명분 내세워 여론 등의 큰 관심 얻을 수 있는 방안
- [체포]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및 체포 전치주의 도입
 - 현재 법관에 의하여 전부 심사·통제하는 방식에서 탈피 ⇨ 수사기관에 체포에 관한 상당한 재량권 부여, 수사 초기 신속한 신병 확보 가능
 - 모든 구속에 있어서 체포가 전치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 사전구속영장청구 사건의 피의자가 자살 등 극단적 선택하는 폐단 방지
- [구속 심사] 체포 후 계속 신병확보 필요성 등 심사
 - 사실상 체포와 구속의 일원화
 - 외부에는 구속 여부에 대한 엄격 통제 방안으로 표방 가능
 - 실질적으로는 체포 상태에서의 수사결과가 영장실질심사에 반영되므로, 구속을 높아질 가능성 有
- [구속 심사 후] 기소 전 보석제도와 함께 영장항고제 도입
 - 법무부·검찰이 줄곧 주장해 온 영장항고제 수용
 - 영장항고제를 통해 구속영장발부의 객관적 기준 수립
 - 기소 전 보석제도 도입, 구속영장제청구를 영장항고제로 통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 [2]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 정비 및 증거능력 인정 확대 방안
 - [최근 검찰 관심사] ① 부패범죄·기업범죄 등에서 디지털 증거의 연결 저장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압수수색 필요성 주장, ② 공안사건



등에서 작성명의를 불명확한 디지털증거(ex. 북한으로부터 수신된 이메일)의 진정성립 인정에 상당한 어려움 경험 ⇨ 증거법 개정 모색

- 디지털 정보에 대한 효율적 압수수색절차 마련 ⇨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절차 보완과 함께 연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

☑ 2015. 2. 2.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자

- ▶ 압수 목적물에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포함 명시
-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보존요청 근거 마련
- ▶ 정보의 출력·복제 불가능한 경우 등 정보저장매체 압수 허용
- ▶ 압수대상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정보저장매체 등 압수수색 허용

- 다만, ① 정보의 출력·복제 불가능한 경우, 이미징에 의한 압수를 생략하고 바로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부분, ② 압수대상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정보저장매체를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등은 수용 곤란

- 증거의 성립진정 인정에 관한 새로운 기준 마련 ⇨ ‘反테러법’과 같이 공안사건에 특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입법 과정에서 공조체제 구축

2) 법무부·검찰 조직 및 기능 확대 방안 제시

☐ ① 검사장 자리 증설 방안

- [조직] 법무부 송무차관직(제2차관) 신설 ⇨ 그 산하에 국가송무국, 국제법무조약국 등 검사장급 보임 가능한 2개 이상의 국 설치

☑ 미국의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제도 참조

- ▶ 1870년 Judiciary Act에 의해 설치
- ▶ ①정부가 패소한 모든 사건 검토하고 상소 여부 결정, ②어떤 사건을 대법원이 심사할 것인지 의견제출, ③대법원의 모든 사건에서 미국연방을 대표
- ▶ 산하에 4명의 부차관(Deputy)과 20여명의 차관보(Assistant solicitor) 두고



있음

▶ 평판 높은 전문지식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받고 있음

- 상고검찰청 신설과 함께 추진 시, 최소 5명의 검사장 자리 증설 가능

● [기능①] 신설된 송무차관 조직에서 법정조언자 의견제출(Amicus curiae) 업무 적극 수행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에서 국가 의견 및 공익 대변

● [기능②] 상고법원안에 따른 대법원의 사건분류심사 절차에서, 공식적으로 사건분류 의견 개진

■ ⇨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검사 보임

● 파견 검사를 형사공동조 등에 투입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 법리 검토 등 역할 부여

● 대법원의 수사실무 등 형사사건에 대한 입체적 이해도 제고 ⇨ 형사재판 판례 형성에 반영

● 연구업무에 관심 있는 상당수 검사들의 선호 있을 것 ⇨ 검찰 인사 적체 해소에 실효적

■ ③ 법무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교차 파견

● 검사를 사법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형사법 관련 연구업무 부여

☑ 사법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위촉 근거 법령

▶ 법원조직법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②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하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 법원조직법 제76조의5(초빙연구위원)

① 제76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빙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법무연수원에 판사를 파견하여, 검사·수사관들 대상으로 형사재판 관련 특강, 형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업무 등 수행

☑ 법무연수원 조직 및 기능 개요

- ▶ [기획부와 교정연수부]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
- ▶ [연구위원] 형사·법무정책 수립,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 연구위원 보임자격 ⇨ 고위 공무원 단체 소속 일반공무원 or 검사
- ▶ 교수 ⇨ 자격 제한 無

- [파견요건] ①국가기관의 파견 요청, ②업무의 성질상 법관 파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해당 법관의 파견근무에 대한 동의, ④법원의 허가

- [파견요건 충족 여부] 연구업무는 형사재판분야와 밀접한 관련성 有 ⇨ 법원조직법 제50조의 「업무성격상 법관파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해당

- [파견기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연장 가능

- [검토] 직제규정(대통령령) 개정하지 않는 이상 연구위원으로 보임하는 것은 곤란, but 교수로 보임하는 것은 가능

- 수사 및 형사재판, 형사법제도 관련 법원·검찰의 상호간 인식의 간극 좁히고, 법질서 수호 및 국민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공동의 연구성과 창출

▣ 4)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

- 검찰의 이른바 '안보위해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요청
- 공안사건에 대한 법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건 처리의 일관성·효율성 도모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법원에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 등에 관한 전담 재판부 설치

▣ 5) 특성화법원 설치 방안



- 검찰의 이른바 ‘중점 검찰청 설치 방안’에 적극적으로 대응
- 법원에서도 일부 지방법원을 특정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

나. 전략적으로 협조 약속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수용 곤란한 카드

▣ 보호수용제 도입 방안

- 상습 살인범·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에 대해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호수용제를 도입하는 방안 ⇨ 법무부가 2014년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

☑ 2015. 4. 9. 정부 발의 보호수용법 제정안 골자

- ▶ 재범 위험성 있는 상습 살인범(2회 이상)·성폭력범(3회 이상), 아동 성폭력범(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등 흉악범죄자를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수용시설에 수용
- ▶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청구 ⇨ 법원은 1년 이상 7년 이하 범위에서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 선고
- ▶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보호수용 집행 후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 심사·결정

- 미래의 범죄가능성 예측을 토대로 사회방위를 위해 범죄자의 신체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제도
- 보호관찰명령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인 것과 비교할 때,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이 장기임
- 가출소 심사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
- 종래 법원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재범 위험성 판단의 오류가능성 등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검토’ 의견 ⇨ 법사위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묵인하는 입장으로 선회
- 어차피 보호수용법 제정안은 과거의 보호감호제도의 폐단에 대한 학습효과로 야당, 학계, 재야법조,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입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 도입 방안**

- 실제 수사현장에서 묵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플리바게닝을 공식적으로 법제도화하는 방안
 - 뇌물, 마약, 조직폭력 사건 등에서 먼저 도입하고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협상 가능
- 성 前 의원 자살 원인의 하나로 검찰의 무분별한 플리바게닝 지적
⇨ 단기적으로는 추진의 장애 요소일 수 있으나,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될 수 있음
- 사법부가 사실상 묵인하더라도, 여론 등 사회 분위기상 당장은 제도 도입 추진의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

■ **③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방안 (2011. 7. 정부 제출 형소법개정안)**

- 범죄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구인영장 발부받아 강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협조

■ **④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 도입 방안 (2011. 7. 정부 제출 형소법개정안)**

- 뇌물범죄, 범죄단체 조직범죄 등에 대하여 범죄 가담자가 범죄규명에 필수적 증언을 한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협조

■ **⑤ 사법방해죄 신설 방안 (2011. 7. 정부 제출 형소법 개정안)**

-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하는 공무원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를 처벌하고, ② 타인의 증언 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허위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폭행·협박하거나 타



인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약속·공여·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처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

- 참고인의 허위진술로 인한 수사절차의 지연, 수사인력·비용 낭비 등 문제점 해소에 기여

다. 접촉·설득 방법

1) 가능한 방안

▣ [제1안] 처장님과 법무부장관 직접 담판 후 실무진 접촉 방안

- 4. 8. 만찬 이후 처장님과 법무부장관의 직접 일대일 담판 속개
- 상고법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인식과 입장 차이를 先확인 후 이를 토대로 양측의 간극을 메우는 실무진 회의 추진
- [장점] 양 기관 수장간 진솔한 대화를 통해 조기에 큰 그림의 협상 타결 또는 점점 모색 가능
- [단점] 법무부가 여전히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견제하거나,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정책결정권자간 담판이라는 최후의 카드가 소득 없이 소진될 우려

▣ [제2안] 실무진 협의를 거쳐 처장님과 법무부장관 협상 추진 방안

- 법무부차관이나 검찰국장 vs 기조실장 등과의 회동 先추진하여, 상고법원에 대한 입장 변화가능성 여부, 법원에서 제시한 협상카드에 대한 반응 등 사전 점검
- 실무진 회동 결과를 바탕으로, 처장님과 법무부장관 사이의 최종 협상 테이블 마련
- [장점] 실무진 회동을 거쳐, 점진적으로 협상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음
- [단점] 법무부 실무진의 협상 능력과 태도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 의도에 대한 오관 가능성, 조기 협상 결렬의 위험 있을 수 있음

■ 검토 ⇨ 전략적으로 제2안 지지

- [現 협상 국면 고려] 법무부의 기본 입장의 본질적 변화 여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분위기 감지를 위한 실무진의 사전 접촉 필요 ⇨ 이를 토대로 처장님과 법무부장관간 회동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함
- [협상 장기화 대비한 포석] 1, 2차례에 걸친 회동으로 Big Deal 타결 담보할 수 없음 ⇨ 양 기관 수장간 잦은 회동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때, 예비 접촉으로 다층화된 사전 예열 과정이 필요함
- [협상 전략 관점] 양 기관 수장간 회동에서의 발언 등 전반적 양상이 향후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고착될 수 있음 ⇨ 향후 실무진 협상의 유연성 결여로 최종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고, 자칫 양 기관 수장들의 견해 차이의 폭이 넓다고 실무진에서 오관할 경우, 실무진 차원의 협상이 원천 봉쇄될 수도 있음

2) 제2안에 따른 구체적 접촉·설득 방안

■ 고려 사항

-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재접촉 ⇨ 협상 타결 난망
 - 협상의 역량과 자질에 의문 ⇨ 최근 회동에서 나타난 무성의한 태도 등에 비추어 입장 변화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움
 - 안○○ 검찰국장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대변인격 ⇨ 反법원 정서와 깊은 사법불신 가진 민정수석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함

■ [1단계] 새로운 접촉면 발굴 ⇨ 김○○ 법무부차관과의 회동

- [인적사항] 1961년생, 서라벌고, 서울 법대, 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조실장·검찰국장 등 역임



- [성향] 매사에 꼼꼼하면서도 탄탄한 업무능력, 조직 내 리더십과 친화력 뛰어나다는 평, 언론관계 원만

- [특징] 법무부장관의 절대적 신임, 상대적으로 민정수석과는 소원

☑ 2015. 2. 검찰 인사 관련

▶ 법무부장관이 김 차관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내정하여 인사안 작성하였으나, 민정수석이 개입하여 現 박○○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막판 교체되었다는 후문

- ①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상고법원 관련 메신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
- ② 검찰 내 신망 등에 비추어 Big Deal을 통해 제도 개선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위치와 능력 확보
- ③ 상고법원안을 적극 반대하는 민정수석, 법무부 검찰국장 라인에 대한 반발 심리 적절하게 이용 가능

- [사법부 접촉 인물] ⇨ 서울고법 이○○ 부장판사

- 김 차관과 1961년생, 서울 법대 81학번 동기동창으로 절친 사이
- 사법정책실장 역임하여 상고법원 추진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

▣ [2단계] 처장님과 법무부장관의 회동 추진

- 법무부차관과의 회동에서 확인된 가장 실현 가능한 협상 카드를 중점적으로 논의
- 실무진 접촉에서 좁히지 못한 간극을 메우는, 최종 정책결정권자 사이의 거시적·장기적 안목의 大 타협 도출

라. 접촉·설득 시기 ⇨ **6월 임시국회 임박한 시점**

▣ 약간의 잠복·이완기 필요

- 이미 법원의 입장은 법무부에 충분히 알려진 상태 ⇨ 단기간 내 재접촉 시도는 초조감만 상대에 드러내어 협상에 악수가 될 수 있음
- 6월 임시국회 직전까지는 협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수행하여 유리한 협상 환경 구축



- 법무부·검찰도 성완중 리스트 수사로 인하여 당분간 **Big Deal**을 심사숙고할 계재 못됨

- 적어도 5월 말 무렵에는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 나올 것 ⇨ 특히 영장 처리 결과 및 그에 대한 여론의 반응 등에 따라 영장제도 개선 제안의 타이밍이 확보될 수도 있음

■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최후 통첩식 협조 요청

- ①법무부차관과의 접촉

- 영장제도 개선 방안, 법무부·검찰 조직 확대 방안, 효율적 수사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 등과 상고법원 도입과의 Big Deal 제안
- 상고법원 도입은 좌절 불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고지
- 협상 결렬은 양 기관의 전면적 관계단절 결과 초래할 것임을 암시하되, 처장님과 법무부장관의 최종 답판의 여지는 반드시 확보해야 함

- ②처장님과 법무부장관의 최종 협상

- 법무부 차관과의 접촉 후 약 1~2주 이내에 회동 추진
- 극한 상황으로의 갈등 확대를 방지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Big Deal 타결

상고법원 관련 신문·방송 홍보전략

2015. 6. 1.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최근 주요 언론에서 상고법원에 우호적인 기사 및 사설 다수 게재
⇒ 여세를 몰아 여론전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기회로 삼을 필요
- 5. 28. 보도된 조선일보 1면 기사,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법률신문 사설 등이 모두 상고법원에 우호적인 입장
- 국회의 법안 심사 지연으로 입법 추동력이 다소 위축된 상황 ⇒ 잇따른 우호적 보도를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함

☑ 조선일보 1면 기획기사의 파급력

- ▶ 여야 의원실에서 상당한 화제가 됨
- ▶ 국민일보 데스크, '조선일보에서 1면 낸 이상 우리도 하나 써야 한다'며 법조기자(정○○)에게 취재를 지시함

☑ 법조계에 영향력이 큰 법률신문이 명확한 논조로 지지 천명

- ▶ '(사법정책자문위의 건의, 재적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 대한변협 및 서울변회 설문조사에서도 찬성이 다수, 서울변회장이 상고법원안에 공식 찬성 발표 등으로) 다행히 이번에는 유관 기관들의 의견이 전례없이 많이 합치되었다'
- ▶ '(대법관 증원 등 대한변협회장 등이 제시하는) 대안들은 모두 지난 국회들에서 이번과 달리, 입법할 정도로 의사가 모이지 않았다'
- ▶ '시급한 상고심개선을 위해 어렵게 다가온 이번 입법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 전통매체로 파급력이 큰 신문·방송의 구체적 홍보전략 재점검 필요
- 기존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정보전달 및 설득'에 중점을 둔 홍보전략 ⇒ 상고법원 도입을 기정사실화 한 후 보완책 논의에 중점을 둔 균형을 전략으로 전환 필요



- 그동안 유효하게 공략하지 못한 채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논의의 진원지로 방치되어 온 진보 성향 언론 활용방안 심층 검토 필요
- 현 상황에서 타깃별, 매체별 기본전략 검토 후 그에 따른 구체적 홍보방안을 수립하기로 함

2. 타깃(Target)에 따른 기본전략

가. [직접적 타깃①] 일반 국민 ⇨ 국민 이익을 매개로 관심 촉발 유도

■ 특징 및 상황 분석

- 전문지식 결여 + 복잡한 논리보다 직관적·감정적 이해 선호
- 심정적 근거 집단의 동향, 여론조사결과 등에 쉽게 영향 받음
- 그간 이성적·논리적 접근 중심의 홍보로 인하여 여전히 상고법원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부족 ⇨ 관심 촉발 및 이슈화 전략 필요

■ 향후 홍보방향

- 종래의 저명인사 기고 방식의 홍보는 국민 상대 한계 효용이 미약한 수준에 이름 ⇨ 새로운 접근 전략 필요
- ① 상세한 정보보다는 국민의 정서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례 발굴 필요
 - ex)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어린 아이가 대형병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 승소판결까지 받았으나, 병원측의 상고로 소송비용만 늘어나고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 ⇨ 상고법원 도입으로 상고심 신속 처리
 - ex) 연간 접수 민사상고심 소가 총액 1조 7천억원 + 형사상고 형벌 총평가액 2조 4천억원(정책용역) ⇨ 상고심 평균처리기간 1년 단축되면 연간 합계액 4조 1천억원의 기회비용인 (산정기준에 따라) 수천억원 상당의 경제 효과
- ②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전방위 홍보 ⇨ '국민에게 이득이 되고, 국민도 원하는 유일한 상고심 개선방안'으로서의 지위 부여



☑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및 방식이 주는 시사점

- ▶① 주요 언론사의 자체 여론조사에서 64%의 높은 찬성률 + 반대 26% 중 **대법관 증원론에 동의한 비율은 약 38%로 전체의 9% 수준에 불과** ⇨ 압도적 찬성을 바탕으로 향후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홍보활동 가능
- ▶② **30대, 월소득 700만원 이상, 진보성향** 등의 다양한 계층에서 68%이상의 높은 찬성률 ⇨ 특히 **'진보성향 국민의 71%가 지지' 결과는 진보성향 언론에 어필 가능**
- ▶③ '사법시험 부활 찬성' 여론 75%와 '상고법원 도입 찬성' 여론 64%가 하나의 기획기사 내에서 함께 소개 ⇨ 상고법원이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법시험 부활과 유사한 성격의 의제로 받아들여짐**
- ▶④ 향후에도 **서울변회, 언론사 등의 여론조사 시행시 사법시험 부활 찬성여부와 한꺼번에 조사함으로써 양자가 ① 국민을 위한 제도로써 ②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③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의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필요**

- ③ 상고법원 도입의 기정사실화를 전제로 보완방안 소개하는 기사 및 기고 필요

☑ 5. 28.자 조선일보 3면 구성 방식(소제목)의 착안사항

大法院 '상고법원 생기면'

'사건심리·선고 없이 끝내는 심리불속행 기각제 없앨 것 무작정 안 기다려도 돼'

국회가 내놓은 보완책

'상고법원 법관 추천위 구성 대법원장의 독단 인사 방지 대법원이 꼭 말아야 할 사건 추가로 명시해 논란 없애야'

⇨ **반대의견은 제목으로 처리하지 않은 채 도입을 전제로 한 보완방안 집중 부각**

- ⇨ **긍정적 인식 형성 및 국민친화적 제도로써 이미지 창출** ⇨ 공감대 형성 및 우호적 여론 확산으로 입법 추동력 확보

나. [직접적 타깃②] 전문가 등 여론주도층 ⇨ 일부의 강한 반대여론 약화 + 부정적 인식 희석을 통한 부동층 흡수

▣ 특징 및 상황분석

- 각자의 논리와 이해관계에 기초해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상당수** + 변호사 상대 설문조사에 대한 참여율 등에서 나타나듯이



부동층 역시 상존

- 민변, 대한변협, 일부 지역변회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 반대 세력 활동
- 반복되는 언론 보도,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로 인하여 찬반 양쪽의 논리에 반복 노출되어 다소 식상하다는 선입견을 가질 위험성이 있는 시기
- ⇨ '위헌론에 대한 반박' 등과 같은 법리적 설득 외에도 '대세론', '도입불가피론', '상고심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론' 등과 같은 현실론으로 어필할 필요가 큼

▣ 향후 홍보방향

- 법률신문 사설, 서울변회 성명, 동아일보 설문결과 등을 기초로 '대세론' 확산 작업 ⇨ 전문가 기고 등의 경우에도 위 자료를 적극 활용
- 서울변회가 사법시험 존치와 상고법원 도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언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
- 법률신문 사설('안정화 후 세종시에도 설치') 등이 제안한 보완책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모양새를 갖추으로써 대외적으로 제도개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스탠스를 취할 필요

다. [간접적 타깃] 입법부 ⇨ 상하향의 전방위 여론 압박 분위기 조성

- ▣ 하향식 압박 ⇨ 여당의 이병석, 정갑윤, 야당의 박지원 등 상고법원 지지하는 다선의원의 지지 요청
- ▣ 상향식 압박 ⇨ 일반 국민 및 여론주도층의 찬성 여론이 의원들에게 유입 + 대세론 내지 불가피론 확산시 반대할 명분 희박

3. 매체에 따른 기본전략

가. 보수 성향 언론

- ▣ 조선일보 ⇨ 공세적 논조로 적극 활용



- [①협력 강화 필요] 언론과 여론의 특성상 극히 사소한 계기로 인하여 상고법원안에 중립적이거나 냉소적으로 태도 돌변할 위험성 상존
⇒ 상고법원에 대한 현재의 우호적 태도를 넘어 상고법원에 관하여 한 배를 탄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지속적인 기사 게재 필요

- [②공세적 논조로 전환 필요] 단순히 상고법원의 필요성 내지 장점을 홍보하는 기능을 넘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 5. 28.자 ‘국민 입장에서’ 기사의 취지를 계속 살리고, 조선일보의 지원 성격으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
- ‘상고법원안은 민생법안이므로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는 논조하에 6월 처리 예정 주요 법안으로 의제 설정

☑ 상고법원안은 민생법안이라는 프레임 설정

- ▶연간 수만 명이 넘는 상고심 당사자(가족 및 관련자를 고려할 경우 연간 수십만 명에 달함)에게 신속한 상고사건 처리는 절박한 문제
- ▶상고심 계속 중인 수조 원이 넘는 사건이 상고심 선고시까지 경제적으로 동결되어 있음 ⇒ 신속한 상고심 처리는 경제활성화와 직결
- ▶판결 이유가 없는 심리불속행 제도로 인한 국민의 불만과 사법불신을 해소하여 성숙한 법치국가로 갈 수 있는 방안

- 만일 6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 논의가 부진할 경우 입법부 내지 법사위를 강하게 질책하는 기사 내지 사설 시도

- 시기적으로 시간적 간격을 둘 필요 없이 신속히 추진함이 바람직함

☑ 조선일보 기획기사 아이템 (기보고 사안이므로 세부 방안은 별지 참조)

▶지상좌담회

- 법원, 검찰, 변협이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사회 원로 등 중량급 인사로 구성

▶변호사 상대 설문조사

- 동아일보와 차별화를 위해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심층조사라고 하더라도 동아일보에서 먼저 상고법원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이상 독자적인 아이템이 아니라 지상좌담회와 묶어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처리될 가능성 있음
- 그 경우 지상좌담회 일시가 최소 6월말로 지연됨 ⇒ 서울변회의 지지 성명



및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상 변호사 설문조사 필요성 크지 않다고 보아 지상좌담회를 먼저 추진할 여지도 있으나, 여전히 유용한 설문결과이므로 6월말까지 기다릴 가치 있음

▶사내 칼럼

- 6. 1.자 최○○ 데스크 칼럼
- 외부 전문가의 기고와는 파급효의 차이가 크므로, 계속 시도할 필요성 있음
- ⇒ **[對국민용] 이○○ 사회부 차장, [對전문가용] 양○○ 법조전문기자** 등의 사내 칼럼 지속 추진

- 만에 하나, 6월 국회 통과 불발시 ⇒ **하반기에 처리되어야 할 주요 법안으로 지속 보도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 **총선의 국회 정기회에서의 법사위 고유법안 심사 일정**

- ▶[2011년(19대 총선 직전)] 10. 24. 제1소위 개의, 12월 말 임시회 개의
- ▶[2012년] 11. 15. 제1소위 개의, 12월 말 임시회 개의
- ▶[2013년] 정기회에서 사개특위 결과보고 등으로 **법안심사 미실시**, 12월 중순 임시회 개의하여 법안 심사
- ▶[2014년] 11. 6. 제1소위 개의, 12월 말 임시회 개의

■ **동아일보 ⇒ 긍정적 여론조사결과를 모멘텀으로 삼아 기획기사 게재**

- ① 국민이 상고법원을 선호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국민의 이익'에 관한 분석기사** 필요
 - 신속성은 물론 비용절감, 경제 효과 등 정책연구자료 제공 (정책실과 협의)
- ② 상고법원 도입을 전제로 **다양한 보완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포함된 기획기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타 언론과 차별화
 - 상고법원 **도입 여부가 아니라** 특정한 보완책(상고법관 임명절차 관련 또는 상고법원 세종시 설치 등 관련)에 관하여 전문가의 찬반 양론을 동시 게재함으로써 **주요 쟁점을 도입 이후 단계 논의로 이동시킴**
- 위 ① 또는 ②안 중 택일 ⇒ 여론조사결과 공표 효과 희석되기 전에 신속히 추진(동아일보 정○○ 법조팀장도 긍정적 답변)
- 여론조사결과를 근거로 입법부에 조속한 **법률안 처리 촉구하는 강한 논조** 가능하도록 설득 작업할 필요 있음



■ 중앙일보

- 2015. 2. 중앙선데이를 통해 상고법원에 다소 비판적인 기사를 낸 이후 팩트 위주 보도로 소강상태임
- ① 중앙일보의 특성상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골든 타임', '상고법원 도입으로 경제적 이익 막대하다는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접근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
- ②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2015. 2. 13. ~ 2. 20. 이루어진 디지털선택 투표 결과 부각(상고법원 찬성 60%,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의 찬성비율과 유사함)
- ③ [단, 사법정책실] ①중앙일보 공식입장이 상고법원에 소극적인 것은 아니고, ②상고법원 관련하여 우호적인 아이টে으로 한번 상당한 지면을 배정해 주기로 협의되어 있는 상태로서, ③결정적인 활용 시기를 저울질 중이나, ④아이템 내용이나 형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는 없음
- ⇨ 이에 따라 우호적인 대형 기획기사 게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동아일보 항목에서 검토한 ①(국민의 이익분석), ②(도입을 전제로 보완책 논의) 가운데 하나의 안에 따른 기획기사 추진
- 그 밖에 대한변협 회장의 수임 관련 부조리를 잇달아 보도하는 등 변협과 비우호적 관계이므로, 서울변회 입장을 반영해 줄 가능성 검토

나. 진보 성향 언론

■ 한겨레

- 민변, 경실련 등의 영향으로 우호적 기사 기대하기 어려움
- [접근 전략 수정 검토] 종래는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우호적 기사 게재 사실상 포기 ⇨ 찬반 양론에 대하여 독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명분으로 대등한 지면 요구·확보하는 전략 검토 필요
- 동아일보 및 디지털선택 여론조사 결과 + 서울변회 지지 성명 등의 우호



적 여론에 터잡아 적극적으로 찬반 각 입장의 기고 게재 요구 가능

- 지상좌담회나 기사의 경우에는 편집자의 주관에 개입되어 왜곡될 확률이 높으므로, 찬반 양측의 기고를 그대로 게재하는 안전한 형식만 고려대상임

■ 경향

- 가장 활발하게 반대 기사를 게재하고 있음
- 찬성측 기고 게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님(4. 2.자 찬성측 김○○ 교수 기고 게재) ⇨ 반대측 기고글의 공세 수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현재와 같은 산발적 게재가 아닌) 찬반 양측의 기고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게재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칼럼 필진 중 법률 관련 종사자인 이○○ 서강대 로스쿨 교수, 한○○ 전국대 로스쿨 교수 등 ⇨ 상고법원 반대 입장 표명한 바 있음
- 기고자들인 김○○ 변호사, 오○○ 아주대 로스쿨 교수, 강○○ 변호사 등도 반대 입장일 것으로 예상됨
- 조○ 교수의 경우 한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바 있으나, 성사시 파괴력에 비추어 다시 접촉 시도할 필요 있음

■ 진보 성향 매체 ⇨ 최소한이라도 활용할 필요 있음

- (상고법원안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상고심 개선이 시급하여 더 이상은 도저히 미룰 수 없다는 취지의 기사 게재만으로도 입법 환경 조성에 의미 있음 ⇨ 상고심 개선을 서두를 경우 (대안으로서 정치한 구체성을 갖추지 못한 대법관 증원론 등 보다는) 법률안 및 후속 조치 등이 완비되어 있는 상고법원안으로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큼.
- 또한 찬성측 기고를 꾸준히 게재 ⇨ 진보 성향 독자들에게 상고법원안이 무조건 반대할 대상이 아님을 주지시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음

다. TV·라디오 방송



▣ 방송매체 장점 극대화

- 홍보 메시지를 시각적·청각적 이미지로 포장하여 입체적 홍보 ⇨ 지면 매체보다 폭넓은 수용자 집단에 친숙하게 접근 시도
 - 뉴미디어 매체 홍보방안과 결합하여 상고법원하면 떠오르는 친숙한 이미지 창출할 필요 있음
- 쉽고, 감성적이며, 흥미로운 매체 및 소재 활용

4. 구체적 홍보방안 로드맵

☑ 6. 1. 이후 신문방송 홍보방안

- ▶ 6. 1. 한국일보 기획기사
- ▶ 6. 1. 조선일보 데스크 칼럼
- ▶ 6. 1. 연합뉴스티비 '고○○의 담담타타' ⇨ 홍일표, 문병호 의원 출연하여 토론
- ▶ 6. 4. KBS 라디오 공감토론 ⇨ 찬성측 신○○(or 이○○), 이○○, 반대측 이○○, 임○○
 - 노○○ 교수의 진행으로 월~금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8시 50분까지 방송
 - **사회 민감한 이슈에 관한 찬반토론 실시**
- ▶ 6. 5. MBC 뉴스플러스(오전 8시 뉴스) ⇨ 상고법원 관련 찬반 논거 보도 예정
- ▶ 6월 초순 진행 중인 국민일보 기획취재에 대하여 담당 기자 및 데스크 상대로 각각 별개의 접촉루트를 통해 자료 제공 및 설득 작업 착수
- ▶ 6월 첫째주 국회방송 ⇨ 상고법원 주제로 홍일표, 문병호 의원 대담 재방송 중
 - **국회의원 다수 시청 예상 ⇨ 대면 접촉 이상의 긍정적 설득효과 기대**
 - 향후 녹화 영상을 2차 홍보 수단으로 활용 가능
- ▶ 6월 초순경 동아일보 기획기사 추진
- ▶ 6월 중 법률신문 대안시리즈 등 추진
- ▶ 6월 중 TBS 라디오 「열린 아침」 출연 추진
 - 월~금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주요 뉴스브리핑, 사회 주요 이슈 관련 인터뷰 등 방송
 - 약 13분 가량 고○○ 앵커와 출연자가 상고법원 관련 인터뷰 실시 예정
 - 인터뷰 대상으로 김○○ 서울변회장 섭외 중 ⇨ 최근 성명서 발표 내용과 유사한 찬성 취지 인터뷰 기대



▶ 6. 15. 정책토론회 관련 보도

- 홍일표 의원실과 입법조사처 공동 주최로,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정책토론회 국회에서 개최** 예정
-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제 및 토론** 담당
- 토론회 직후, **연합뉴스** 등을 통해 상세한 내용 **보도** 예정

▶ 6월 하순경 tvN 「빨간 의자」 출연

- 고○○, 김○○ 앵커 진행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40분 방송
- 정치·사회·경제·문화 각 분야 명사들 출연하여 진솔한 인생이야기 공개
- **6월 3, 4주에 특별기획프로그램 '시즌4' 방영** 예정
 - 고○ 시인, 임○○ 영화감독, 김○○ 프로야구 감독, 이○○ 여사 등 출연
 - **이○○ 전 대한변협회장 출연** 확정되어 6. 9. 촬영 예정 ⇨ 법조인으로서의 지나온 삶을 소개하면서 **상고법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 기대



별지

가. 지상 좌담회

▣ 참석자 (3명이 바람직)

- (사회 원로) 오○○, 김○○, 부○○, 이○○, 배○○, 신○○
- (실무 원로) 이○○,¹⁾ 권○○²⁾, 권○○³⁾ → **추가 발굴 필요**
- (다양화 원로)⁴⁾ 전○○, 전○○, 박○○, 차○○, 하○○

▣ 내용

● 도입

- 상고법원 관련 법안 제출 및 법사위 논의 상황

●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 공통 인식

- 대법원의 상황 + 글로벌 스탠더드
- 국민의 불이익
- 공감대 형성 : 설문조사 결과 소개

● 상고심 개선의 역사 : 모두 실패 → 근본적인 대안 필요

- 기존 제도 도입 역사 및 한계(간단히)
- 참여정부 논의(법무부 제출, 참여연대, 경실련, 임○○ 등 찬성)
- 이명박 정부 논의 : 대법관 증원론 폐기

● 위헌론 (간단히 언급)

- 학계 다수설, 헌재 결정 → 임○○ 속기록

1) 오○○, 이○○ 모두 포함 시 지나치게 親 법원 또는 親 상고법원 견해자로 구성되었다고 볼 여지 있음. 두 분 모두 조선일보에 찬성 기고문 게재함
2) 검찰법무부 등의 중립 유도 목적이나, 발언의 수위 및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
3)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입장과 선진국 제도에 대한 설명의 설득력 제고 가능
4) 참석자 3명 모두 남성의 사회 원로만으로 구성될 경우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름과 경력만으로도 비슷한 진영 소속으로 추측되는 이들로만 구성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입장에서 상고법원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낼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함



● 대법관 증원의 한계

- 전원합의체 활성화 방향에 역행 :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상황
- 헌법 예정 사항 아님
- 인사청문회의 현실적 문제

● 상고법원안의 내용 및 기대 효과

- 신속 : 설문조사 결과 인용
- 충실 + 전문 + 심불 폐지
- 전원합의체 활성화 : 정책법원 기능의 효용 → 매일경제 보도 이후라면 정책연구용역 일부 인용 가능

●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법원 : 사실심 충실화 + 임명절차 보완 방향 제시
- 검찰 : 객관의무 + 공정성 강화 → 충실한 사실심 구현의 협조의무
- 변형 : 충실한 사실심 구현의 핵심 주체
- 사실심 충실화는 법조 3륜의 공통적인 책임이라는 점 인식
-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 필요
- 상고심 제도 개선 구현 + 불필요한 상고 절제 → 선진 사법시스템 구현

● 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국회의 책임감 강조

- 동일한 논의 무한 반복
-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신뢰 외면
- 광복 70주년 등 역사적 의미에 비추어 논의 종결 필요

▣ 세부 내용 : 조선일보 및 좌담회 참석자에 사전 제공

나. 설문조사



1) 추진 배경

- 기획기사의 설득력·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객관화·수치화된 표지(標識) 확보
 - 대한변협, 서울변회의 설문조사 결과가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상황 ⇨ 찬성 측 입장에서 인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사결과 필요
- 방어적·수세적 홍보에서 적극적·공세적 홍보로 나아가야 할 상황
 - 입법 성사를 위해 주어진 시간 충분치 않음 ⇨ **역량과 화력을 집중하여 극적인 전기 마련** 필요
 - 설문조사 실시에 다소간 Risk 있을 수 있으나,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돌파 전략** 구사 필요

2) 기대 효과

- '전문가집단도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반대논리 해소
- 설문조사 과정에서 법률안에 대한 홍보를 통해 긍정적 여론 조성
- 법조계 내 여론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소위 등에서 대안 제시 → 공청회 제안사항 및 의구심 해소 가능
- 법률안에 대한 변호사들 다수의 긍정적 의견 확보될 경우, 입법 추진력 고양

3) 구체적 시행 방법 검토

■ 조사방법

● [1]이메일 조사 방안

- [장점] 단기간에 가능, 다수의 변호사 참여로 결과 신뢰도 확보, 비용 저렴
- [단점] 상고법원 반대집단의 조직적 참여로 결과 왜곡 가능성



- ②전화 조사 방안

- [장점] 결과 왜곡 우려 적음
- [단점] 매우 낮은 응답률로 표본수 확보에 어려움, 본인 여부 확인 곤란, 법안 내용 설명 어려워 홍보 효과 없음, 스팸성 전화로 받아들여 부정적 답변 가능성

- ③대면 조사 방안

- [장점] 결과 왜곡 우려 적고, 조사 대상자를 유리한 방향으로 선정 가능, 소극적 지지자들의 설문참여 가능성이 다른 방안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단점] 조사 사실 자체가 과도한 이목을 끌 가능성, 약속 없이 방문하는 경우 조사에 대한 거부감 발생, 로펌은 방문 조사 불허할 것으로 보임, 비용 과다, 방문 또는 면담 순서로 인한 공정성 시비 우려

- 검토 ⇨ ①안 이메일 조사

- 대한변협 등이 실시한 통상적인 조사방법임
- 결과 왜곡 가능성은, 설문문항 설계, 조사기간 조정 등의 방법으로 방지 가능

- 조사기간

- 응답률 10% 도달하는데 20일 이상 소요됨

- 2014년 대한변협 조사시 28일, 서울변회 조사시 22일 각 소요, 각 응답률 10%

- 미리 조사기간을 공지할 필요 없음

- 일정한 수 또는 응답률에 도달하면 중단하는 방식으로 진행상황 통제할 필요

- 일정 수 또는 응답률도 미리 공지할 필요 없음

- ex) 응답자 700명 정도인 상태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집단 반대 회신이 제출되기 시작하는 경우 응답자 700명 기준으로 결과 발표

- ※대한변협의 응답자수 1,572명보다 많으면 결과의 신뢰성 측면에서 유리하나, 그보다는 '높은 찬성률' 도출이 훨씬 중요함

- 설문 시작일시 결정에 고려할 요소



- **[대한변협의 공격 예상]** 설문조사가 시작되면 ①설문의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 ②반대집단에 대한 설문참여 독려, ③맞대응 설문조사 등으로 조사에 악영향 미치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됨 ⇨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시간적 간격 없이 결과 공표함**이 바람직
- 언론보도 예정일 약 25일(= 조사기간 20일 + 분석 및 기사작성 5일) 전에 시작함이 바람직

■ 이메일 주소 수집 방안

- 대한변협에서 **개인정보 취득경위를 문제삼을 수 있음** ⇨ 각 지역변회지 등 공간된 자료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를 일일이 입력하는 방안 검토

■ 지역별 편차 보정 방안

- 응답 결과를 지역별 변호사 비율로 보정할 필요 ⇨ 전국 변호사집단 전체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한다는 명분** 있음
- **부수적으로 반대 성향이 강한 일부 지역(부산, 광주 등)의 집단 반대로 인한 결과 왜곡을 희석하는 효과** 있음
- ex)전국 평균 응답률이 10% 수준(약 1500명)임에도 부산변회의 반대 독려로 인하여 부산변회 소속 변호사의 약 50%인 300명이 **반대 취지로 대거 참여한 경우** ⇨ 부산 변호사 응답자 300명 전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전국 변호사 중 부산 변호사의 비율(약 4%)에 해당하는 **약 60명(=1500×4%) 부분만 반영**
- **구체적 보정 방안** ⇨ 미리 정하거나 공지하지 아니함이 바람직
- 보정 방법으로 ①**비율로 환산**(위 설례에서 300명 중 250명이 반대한 경우라면 반대를 50명(=250×60/300)으로 환산), ②**선착순 기준**(위 설례에서 부산지역 60번째 회신까지만 반영) 등의 여러 방법이 있음
- 조사결과에 따라 유리한 방안 택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보정방법은 사전 공지하지 아니함

■ 참여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한 설문 방식 채택



- 이메일에 대하여 회신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메일 중 자신이 동의하는 항목을 **클릭하는 것으로 설문 참여가 마무리 되는 간편한 방식**의 조사 필요
- 설명 및 문항을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여 **참여자의 시간과 노력 절약**
- ⇨ 상고법원에 '적극 찬성하지는 아니하나 반대까지는 아닌' **소극적 지지 변호사들의 설문 참여 극대화**

4) 설문 문항(안)

▣ 기본 방향

-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안'이 아닌 국회의원 168명이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형태
- 법률안 중 변호사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을 부각시킨 후 마지막에 법률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
- 각 문항의 구체적 워딩과 배열 순서 등은 설문조사 전문가와 추가 협의할 필요

▣ 인적 사항 확인 문항

- 귀하의 변호사 사무실은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 지역별 보정을 위하여 필요함
- 귀하의 법조 경력은 몇 년입니까? ①5년 미만 ②5년 이상 10년 미만 ③10년 이상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집단 반대에 대비하여 5년차 이상 법조인에 대한 설문결과를 별도로 확보해 둘 필요 있음

▣ 1항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 귀하는 현행 상고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2항 (심리불속행 폐지)

- 법률안은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 3항 (상고심리 기간 단축)

- 법률안에 따라 상고법원이 대부분의 상고사건을 심리하게 되는 경우, 상고심 심리기간이 현재보다 단축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반대하기 어려운 설문으로 구성

■ 4항 (국민의 권익 향상)

- 법률안에 따라 상고법원이 대부분의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권리구제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항 (상고법원의 위헌 여부)

- 법률안에 따라 상고법원이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상고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지적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반대 논거 일부 제시하여 설문조사 편향성 논란 완화

■ 6항 (임명절차 보완 가능성)

- 법률안에 따른 상고법원 법관의 임명에 관하여 사법부 뿐만 아니라 입법부 및 행정부도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 법률안 보완 가능성을 통해 반대 논거 일부 희석

■ 7항 (의무적 변호사 대리)

- 법률안은 상고심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찬성하십니까?

- 변호사들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결론 직전에 배치하여 우호적 태도 조성

■ 8항 (결론 부분)

- 귀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에 찬성하십니까?



5) 조사 주체

■ 1안(조선일보) : 실제로는 설문조사 기관 담당 예상

● 장점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보도 여부 통제 가능

● 단점

-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의 설문 참여율 저조할 가능성

■ 2안(서울변회)

● 서울변회 자체 여론조사 시스템 이용

● 장점

- 서울변회를 통한 설문조사 참여 독려가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움

● 단점

- 설문조사 결과 작년에 비해 좋지 않으면, 집행부의 정치적 부담
- 5월 1일 전후 법률신문을 통해 '취임 50일 기념 인터뷰'에서 상고법원에 대한 '찬성' 입장 표명 예정 → 설문조사가 '신임투표'로 해석될 소지 있음
- 서울변회 입장에서 특정 언론사에 설문조사 결과 제공하는 데 거부감 가질 수 있음
- 작년 설문조사도 언론사에서 전혀 보도하지 않았음

■ 검토 → 1안

- 조선일보가 주체로 실시하는 방안이 설문조사 성공가능성 확보, 조사결과의 효과적인 홍보에 보다 유리
- 1안에 의할 경우, 전문 설문조사기관에 지급할 용역대금 지원 필요
 -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 등 게재하면서, 광고비에 설문조사 실시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안 등 검토 {일반재판운영지원 일반수용비 중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지원 세목(1133-210-01) 999,000,000원 편성}



6) 로드맵 (6. 29. 월요일 보도를 가정함)

- 이메일 리스트 확보, 실시기관 선정 및 설문 문항 확정 6. 4.까지
- 설문조사 실시 6. 5. ~ 6. 25.까지
- 조사결과 분석 6. 28.까지

7) 기타 고려 사항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통제 가능성

- 찬성 60% 이상 : 긍정적
- 찬성 50% 이상 ~ 60% 미만 : 활용 가치 크지 않을 수 있음
- 찬성 50% 미만 : 활용 불가

▣ 설문조사 적정 참여 규모 확보 가능성

- 서울변회, 대한변협의 유사설문 2회 실시(4개월 전) → 참여를 저하 가능성. 끝.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의원 면담 결과 보고

1. 면담 개요

- [일시] 6. 12.(금) 10:00~10: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519호(이정현 의원실)
- [면담·보고자] 기획제1심의관
- [보고 주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사법한류 추진 방안

2. 면담 주요 내용

가. 이정현 의원님 모두 말씀

- 면담 성사 경위
 - 지난 주 기초실장 등과의 만찬 자리에서 사법한류 추진 방안 개요를 전달받은 후 상세 내용을 듣고 싶었음
 - 주제만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가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할만한 내용일 것으로 기대했음
- 상고법원에 대한 적극 지지 의사 표명
 - 현재 대법원의 사건 처리 부담 등 상고심 재판 현황에 비추어 상고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대법관 증원론과 상고법원 설치 방안을 놓고 의견대립이 있다고 들었으나, 본 의원은 여러 사법선진국가 사례 등에 비추어 상고법원 설치가 옳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 상고 사건 폭증에 따른 여러 부작용 등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언론에 소개하는 등 여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법률안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나. 사법한류 추진 방안에 관한 보고

■ 기존 기초보고서를 토대로 약 10분간 보고

- ①추진 배경, ②국제상사법원 신설, ③국제중재기구 설립, ④사법제도 수출 사업, ⑤향후 추진 계획 順으로 보고

다. 보고 후 이정현 의원님 견해 표명

■ 우리나라 현 실정에 맞는 시의적절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함

-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3조원인데, 국내기업 해외지급 법률비용 10조에 달하고 있어 선진화, 국제화를 통한 타개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함
- 발전된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개도국 등에 전파함으로써 국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다 상세화된 구체적인 추진 전략 필요

- 어느 기관이 주도적인 추진체가 되어, 어떤 단계를 거쳐 최종 목표를 이룰 것인지에 관한 장단기 플랜을 보다 구체화해야 할 것임
 - 사법부만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법무부, 외교부, 코이카 등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 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여 외국 법관을 임용하고 재판절차에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치밀한 실행계획이 있어야 할 것임
- 사법제도 수출 관련해서는 개도국 등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효과적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이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공론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임

■ BH에 바로 보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 국가적 아젠다로 삼아 추진해 볼만한 정책이라고 사료됨
- 다만, 보고 방식 관련하여 VIP께 직접 보고하는 방식과, 비서실이나 부속실 등 보좌진을 통하는 방식 중 어느 것이 나올지 고민됨

라. 향후 조치 등 관련

- 보고 직후, 이정현 의원께서 BH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바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음
- BH와 연락 후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씀함 [끝].



상고법원 판사 임명 절차 재설계 및 설득 방안 검토

2015. 7. 13.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논리 중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관하여 **객관적 검증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음
 - 헌법이 대법관에 대하여 ①국회의 청문회 및 임명동의절차와 ②대통령의 임명절차를 두는 취지 ⇨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 판사에 계도 준용될 필요
- 상고법원 법률안 통과에 결정권이 있는 국회 및 BH에서 위 논리가 득세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국회 및 BH 설득을 위한 특단의 카드**가 필요함
 - 특히 BH는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대통령에게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지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위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종래 검토한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안의 한계를 분석하고, 국회와 BH 설득 가능한 임명 절차를 모색할 필요 있음
 - 내부적으로는 CJ의 인사권을 어느 정도는 보장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CJ가 파격적으로 인사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내세울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2. 추천위원회에 관한 종전 구성안의 한계

- 종전 구성안의 개요
 -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에 국회 및 대통령이 선출 및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시키는 방안 ⇨ 국회 2명, 대통령 1~2명, 사법부 현직 법관은 최소화



■ 한계

- ① BH 입장에서는 여전히 반대할 가능성 높음
 - BH는 ‘대법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명시한 헌법 제104조 제2항 취지의 관철 여부’ 라는 프레임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있음 ⇨ 9~10명의 추천위원 중 **1~2명의 지명권은 이와 거리가 너무 먼 방안임**
 - ‘추천위원회 위원의 각 기관별 적절한 배분’ 이라는 제한된 해결 수단만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생긴 한계임 ⇨ 국회 선출 위원 등 모든 기관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대통령 지명 위원의 수가 너무 적어짐
- ② 국회 몫의 추천위원이 포함될 경우 여야간 정치적 타협에 따라 **후보자 나눠먹기 식의 추천**이 이루어질 가능성 ⇨ 사법부의 정치권 예측, 일부 법관의 정치권 줄대기 현상 발생 우려

☑ 국회 추천 위원 제도로 인하여 정치적 논란에 자주 휩싸이는 위원회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 ⇨ 위원장 포함 11명의 인권위원(임명권자 대통령) 중 국가인권위법 5조 2항 1호에는 ‘**국회가 선출하는 4명**’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여야 각 2명씩 지명함

▶ **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임명권자 대통령) 중 **대통령 지명** 위원장 포함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방송통신위원회법 5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위원장 포함 9인의 위원(위촉권자 대통령) 중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3명 추천, **소관 상임위원회가 3명** 추천으로 되어 있으나 (위 법 18조), **관행적으로** 여당 6명, 야당 3명으로 구성함

▶ **뉴스통신진흥회(연합뉴스 임원진 추천권 등)** ⇨ 이사장 포함 7명(임명권자 대통령) 중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3명 추천 (뉴스통신법 26조)

▶ **세월호 특조위** ⇨ 위원장 포함 17명(임명권자 대통령) 중 여당 5명, 야당 5명, 대통령 2명, 대한변협회장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 3명

▶ **KBS 이사회** ⇨ 위원장 포함 11인의 위원(방송통신위 추천, 대통령 임명) 중 **법령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여당측 7명, 야당측 4명

▶ **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주주) 이사회** ⇨ 이사장 포함 9인의 이사(방송통신위 임명) 중 **관행적으로** 여당측 6명, 야당측 3명 (EBS는 여당측 7명, 야당측 2명

- ex) 상고법원 판사 24명이 임기 4년을 전제로 매년 6명씩 임명되는 경우 ⇨ 2배수를 추천한다면 매년 추천되는 12명 가운데 야당측 위원을 배려한다



는 명분으로 1~2명의 피추천자에 대한 야당측 지분을 인정할 가능성

☑ 헌법재판소 재판관(임명권자 대통령) 중 3인의 국회 선출 제도로 인한 폐해

▶ '유력 정치인 사무실에 고위 법조인의 청탁성 이력서가 가득하였다'는 소문

- [3]국회에 대하여 대법관의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추천위 참여권을 인정하게 됨 ⇨ 대법관의 경우와 균형에도 맞지 않음
 - 헌법은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에 대하여도 국회의 추천권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3. 새로운 임명 절차 검토

1) 기본방향

- [1] '추천위원의 기관별 배분'이라는 한정된 틀을 넘는 새로운 방안 검토 ⇨ 국회에 대하여 추천위원 선출권 대신 인사검증권한 부여
 -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가 추천위원회에 관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님
 -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특정된 후보자에 대한 동의 여부 권한'을 (사실상) 부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고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함
- [2] 사법부에 우호적인 추천위원의 과반수 확보 여부에 얽매이지 않는 방안 검토 ⇨ 상고법원 반대세력 설득을 위한 최후의 카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시기임
 - 입법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BH와의 협상 창구가 자주 마련되기 어려운 점 등 ⇨ 통상의 협상 방식을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고, 일부 선제적 양보 불가피함
- [3] 국회 및 BH 각 기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설득논리 개발이 수반되어야 함 ⇨ 특히 의원별 입장이 엇갈리는 국회보다 상고법원에 대한 정서적 반감을 기반으로 한 BH 설득전략과 논리가 핵심임



2) 추천위원회 구성 방안 검토

▣ [개요] 당연직 3인 외 6인 ⇨ CJ와 대통령이 각 3인씩 지명

	대법관후보추천위	정책실 법률안	종전 검토안	금번 추가 검토안
당연직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선임대법관	상고법원장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전문협의회 이사장			
비당연직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대통령 지명 1명	대통령 지명 2명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추천 2명	국회 추천 2명	
	학식, 덕망 있는 비변호사 3명	학식, 덕망 있는 비변호사 2명	학식, 덕망 있는 비변호사 3명	학식, 덕망 있는 비변호사 3명
종합	행정 1명, 사법 3명, 재야 1명, 교수 2명, 일반 3명	입법, 행정, 사법 각 2명, 재야 1명, 일반 2명	행정 3명, 입법 2명, 재야 1명, 사법 1명, 일반 3명	행정 4명, 재야 1명, 사법 1명, 일반 3명
우호표	10명 중 6명으로 과반 확보 (사법 3+일반 3)	9명 중 4명으로 과반 미달 (사법 2+일반 2)	10명 중 4명으로 과반 미달 (사법 1+일반 3)	9명 중 4명으로 과반 미달 (사법 1+일반 3)

▣ 장점

● ① CJ의 인사권 대폭 양보 ⇨ 외부 설득에 유리

- ‘(대법원장이 지명하지 아니한)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구성하는 추천위원회가 추천권 행사’ 한다는 것은 대외적 상징성과 설득력이 가장 큰 요소임

☑ 다른 고위공직자 후보추천위원회와의 비교 ⇨ 대법원이 파격적으로 양보한 것으로서 진정성 있는 권한 양보임을 부각시킬 필요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 9명의 위원 중 법무부 우호세력 5명(검찰측 인사 2 +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비변호사 일반위원 3)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 7명의 위원 중 국회 우호세력 4명(나머지 3명은 법조3론 대표)

● ② 대통령의 관여 정도 획기적 강화 ⇨ BH 설득에 유리



- 대통령 지명 위원이 추천위 논의를 주도하게 되므로 **사실상 대통령에게 지명권을 부여한 것과 유사한 효과**
- BH입장에서도 헌법상 CJ에게 임명권한이 있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핵심을 얻었다고 받아들일 여지 있음
- ③ 후술하듯 국회에 인사검증권한 부여하므로, 국회로서는 추천위 구성에서 배제되어도 불만을 갖지 아닐 것임

■ 단점

● ① BH측의 추천위 전면 장악 가능성

- 대통령 지명 위원들은 대통령 의사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추천 여부를 결정할 것인 반면, CJ가 지명한 외부위원들은 법원 희망대로 움직인다는 보장 없음 ⇨ **BH가 추천 여부를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CJ 인사권 형해화**될 가능성
- ※ CJ는 사회 각계각층, 여성계 등을 배려하여 3인의 지명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반면, 대통령은 제약 없이 의중을 따를 사람으로 지명 가능
- ② **일선 법원 판사들의 반발 내지 우려 가능성** ⇨ 추천위에 대통령 지명 위원이 참여하는 점 및 BH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추천될 수도 있다는 점으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 염려

■ 검토 ⇨ 수용 가능

- 상고법원안 통과와 최종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실효적인 협상 카드를 제시할 필요 큼 ⇨ **‘대통령의 영향력 강화 + CJ의 사심없는 인사권 양보’로 설득 가능성 높아짐**
- [+]이에 더하여 피추천자들 중 실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도 BH와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중이 반영되도록 보장하겠다는 전략적 스탠스로 설득 검토
- 대통령 지명 위원에 의한 추천위 장악 및 CJ 인사권 형해화 우려 관련
 -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사법부가 원하는 재원을 상고법원 판사로 배치하는데 큰 장애요인은 되지 않을 것임

☑ 추천위원회 추천 결과에 사법부 의중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및 방안



▶① CJ의 심사대상자 제시권한 적극 활용

- 천거를 거친 후 CJ가 [결격사유 없는 피천거인] + [(CJ가 선정한) 심사대상자]를 추천위에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됨
- ⇨ 결격사유 없는 외부 피천거인의 수 및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제시될 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음

▶② 국회의 인사검증절차를 의식한 추천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 법원이 선호하는 현직 법관 후보군이 인사검증 과정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후보자 중 대다수를 점할 가능성 ↑

▶③ 추천위 위원장에 대한 지명권은 여전히 CJ에게 있음

▶④ 상고법원 판사의 사회통합적 위상에 비추어 추천위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더라도 상당수 위원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추천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 활용
⇨ 사법부의 적극적 의결권은 보장되지 아니하더라도 낙천시킬 소극적 의결권(9명 중 4명 반대)은 사실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함

▶⑤ 피추천자 가운데 최종 후보자를 선택할 권한은 CJ에게 있음

- BH측 희망 피추천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법원에 적합한 사람으로 걸러낼 수 있음

▶⑥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후보자인 경우에는 헌법상 임명요건인 '대법관회의의 동의' 부결을 통하여 배제할 수 있음

- [보완책] 대통령이 지명할 위원의 자격요건에 '여성 1인 이상' 조항 및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요건 조항을 추가 ⇨ 대통령의 지명 범위 제한하고, BH 수석비서관 등이 직접 추천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법관들의 사법부 독립 등 침해 우려 관련

- ① 법관들 상대로 위의 여러 사정을 들어 사법부 독립에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한 방안임을 설득할 필요

☑ 참조 : 사법부가 과반수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법관 추천위원회 사례

▶ 프랑스 최고사법관회의 중 법관분과위원회

- 사법 불신 초래하는 일련의 사건으로 법조인의 동업주의를 혁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08년 헌법 개정으로 사법관 대 비사법관 비율이 6:6 ⇨ 7:8로 외부인사 비율이 증가하여 과반수가 됨

▶ 미국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관행에 따라 주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의회 또는 주지사가 임명한 위원이 과반수인 경우가 대부분임

▶ 영국의 경우 고위법관 임명의 폐쇄성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헌법개혁법으로 대법관제청위원회 설치 - 위원장인 대법원장외에 법관 1명, 각 민족지역별 법관 임명위원회에서 각 1명씩 총 5명으로 구성

-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비법률가여야 함

- ② 또한 CJ 인사권 강화로 인한 법관 관료화를 우려하는 일부 법관들(단독 판사급 및 우리법연구회 등)에 대하여 'CJ의 인사권 축소 방안' 으로 제시 가능함

3) 추천위원회 추천 효력 및 배수 검토

▣ 추천의 효력

- 기보고된 바와 같이 임명대상자를 추천된 후보자로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추천위의 높은 위상을 설득·홍보함이 타당
- 유사 사례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검 감찰부장 등

▣ 추천 배수 ⇨ 3배수 적정

- 3배수 추천하여도 대외적 설득·홍보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아니함
-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 후보 추천 배수와 같은 수준이고, 상고법원 판사의 위상을 고려하면 외부의 비판 가능성 높지 아니함

☑ 국내외 고위 공직자 후보 추천 '배수' 비교

▶ 대법관·검찰총장·법무부 검찰관 및 대검 감찰부장 ⇨ 3배수 이상

▶ 특별검사·국회예산정책처장·정부법무공단이사장 ⇨ 2배수 이상

▶ 네덜란드의 대법관 후보 추천절차

- 사법부가 6명 명단 작성 ⇨ 입법부가 그 중 3명의 후보자 명단 확정하여 송부
⇨ 행정부 각료회의에서 최종 1인 선정

▶ 캐나다의 연방대법관 후보 추천절차

-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후보자군 선정 ⇨ 연방수상이 구성한 선정위원회가 그 중 3명의 후보자 선정(단, 법령상 근거 없는 관행적 절차임) ⇨ 연방수상이 그 중 1인 선정 ⇨ 의회 청문회 거쳐 총독이 임명

▶ 미국 미주리 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콜롬비아 특구 등 ⇨ 3명의 후보자 선정



- 종전 검토 당시에는 2배수 추천 의견 ⇨ 추천위원회 주도권을 대통령 지명 위원이 갖게 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3배수로 함이 안전함
 - 문제제기 있는 경우 즉시 2배수로 하향 제시할 수 있음

4) 국회의 권한 보장 모색 ⇨ **약식청문회에 준하는 인사검증권한 부여**

■ 인사청문회 관련 개관

☑ 청문회 대상 및 주체(인사청문회법 2조 1호 및 국회법 46조의3, 65조의2)

▶ 국회 임명동의 대상자 ⇨ 대법원장·헌재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국회 선출 헌재재판관 및 중앙선관위원은 국회 선출이므로 역시 포함) 후보자

⇨ **인사청문특위**에 의하여 청문 실시

▶ **그 밖의 인사청문** 대상자 ⇨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재판관·중앙선관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재재판관·중앙선거관위원 후보자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문 실시

☑ **청문의 방식** ⇨ **공개 및 출석 답변** (인사청문회법 4조 1항, 14조)

▶ **공직후보자가 출석하여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 (서면 예외 조항 없음)

- 상고법원 판사 전원을 위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움 ⇨ 대의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갖는 검증 및 민주적 정당성의 취지를 살리면서 출석이 아닌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 모색 필요

■ 참고사례 ⇨ **필요한 경우에만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비공개·불출석 검증제도**

☑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 등 13인, 2013. 1. 21. 발의)** 및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2013. 5. 1.발의)**

▶ 내용은 두 법률안이 거의 동일 ⇨ 대통령의 지명 등 대외적 공표 행위 전에 대통령 소속 사전(인사)검증위원회에서 ①병역, ②재산형성 과정의 위법성, ③전과, 체납 여부 등 준법의식, ④자질·태도 및 능력 등의 인사검증을 실시

▶ 법률안의 문언상 비공개의 서면 검증·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됨



- '위원회는 인사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원혜영 의원안 14조)

- '위원회는 사전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서면질의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함진규 의원안 15조)

- 검증자료에 대한 검증대상자의 열람 및 정정청구 제도 (각 15조, 16조)

▶사전인사검증을 받지 않은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명 불가

▶그 후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은 (개인적 비리폭로의 장이 아니라) 정책검증과 비전제시의 장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①비공개, 불출석 형식의 인사검증 제도로서 ②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③여당과 야당에서 모두 발의한 법률안이라는 점에서 상고법원 판사 인사검증 관련하여 개념을 차용할 여지 있음

- 단 위 각 법률안은 **대통령 소속 검증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서 향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별도로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준용하기는 어려움

▣ 제도 설계 ⇨ 가칭 '국회 인사검증위원회 심사제도'

☑ 개요

① CJ가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검증 요청** ⇨ ② 소관 상임위는 **인사검증위원회를 열고 자료제출요구권 등 행사하여 심사** ⇨ ③ **예외적으로 재적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 출석 및 진술요구 권한** ⇨ ④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국회의장에 보고 ⇨ ⑤ 국회의장은 심사경과보고서를 CJ에게 송부, CJ는 **심사결과 존중의무**

● [CJ의 인사검증 요구 형식] **인사검증 '요청'**

- 후보자 통지, 보고, 인사검증 요구 등보다는 현행 **국회법의 '인사청문 요청'**을 참고하여 **'인사검증 요청'**으로 함이 타당

● [검증 주체] 소관 상임위(**법사위**)

- 현행 국회법이 국무위원 등 **장관급에 대하여도 소관 상임위가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하는 것과의 균형 등**

● [심사권한] 자료제출요구권 등에 기한 **서면심사 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인사검증 대상자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권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하여 국회의장에 보고

● [검증대상자의 범위] 후보자로 한정

-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vs [피추천자 중 CJ가 선택한 후보자]
- 아래 사유로 최종 후보자만을 검증대상자로 함이 타당함
- ① 특정되지 아니한 후보군 전원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행하는 선례를 찾기 어려움
- ② 대법원 산하 기관이나 행정부서도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을 상대로 미확정된 후보군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아니함
- ③ 다수의 후보군에 대한 검증을 행할 경우 국회가 사실상 후보자 선택권을 행사하게 될 우려가 있음 ⇨ CJ의 임명권 침해

● [예외적 대면심사 내지 면접권한 인정 여부] ⇨ 적극

- 인사청문 대상자가 아니므로, 예외없이 서면심사로 족하다는 견해 가능
- ⇨ 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② 국회를 설득하기 위하여 인사검증 제도를 설계하는 취지 및 ③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예외를 인정할 필요 있음
- 예외없이 서면심사권한만을 부여할 경우 국회 설득 어렵고, 형식적 무마책이라는 반발 예상됨
- 단 예외 요건을 엄격히 하기 위하여 출석 과반수가 아닌 재적 과반수의 찬성 요하는 것으로 함

● [심사경과보고서의 효력] ⇨ 존중, 사실상 기속력

- 법률안의 문언은 대법관추천위원회 등의 예에 따라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경우 심사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 가 될 것임
- 국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표명한 이상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다만, 보고서의 기속력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도 부적절함)



5) 종합검토 ⇨ 제도에 따른 설득전략

■ BH 설득전략

- ① 대통령이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 CJ는 관련 인사권을 대폭 내려놓았음
- ② 추천위원회 위원 수 및 결집력에 비추어 대통령 지명 위원이 대통령의 의중을 위원회에서 관철시킬 수 있음
- ③ BH와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실제 피추천자 중 후보자 선택과정에서도 BH의 의중이 반영되도록 보장하겠다는 전략적 스탠스를 드러낼 필요

■ 국회 설득전략

- ①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에 준하는 검증권한을 국회가 갖게 됨
- ② 대통령과 달리 선출권력이 아닌 대법원으로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부적격 처리된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여지가 전혀 없음 ⇨ 국회가 사실상 가부간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임

■ 일부 구성원 설득전략

- ① CJ의 인사권이 강화되지 아니하고, 강화할 의사도 없음 ⇨ 법관 관료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함
- ② 추천위원회에 BH 지명 위원이 관여하는 것은 최종심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득이한 조치임 ⇨ 대법관 임명에 관한 헌법정신을 상고법원 판사 임명절차에 반영한 것에 불과함.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방안

2015. 7.

기획조생실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 입법 성사를 위하여 **법무부의 협조 견인 필요**

- 법사위 검찰 출신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영향력 무시할 수 없음
 - ㄴ 특히 법사위 1소위 소속 김진태 의원 등은 (중략)
- 입법 최종 목표 시점인 하반기 국회(10월, 11월경) 법률안 심사 돌입 이전에 설득 완료 필요

☑ **상고법원 입법추진 로드맵**

- ▶ [7월 임시국회] 7. 16./7. 20. 법사위 1소위 안건 상정 및 충실한 논의
- ▶ [8월 임시국회] 회기: 8. 16.경~8. 31. 예상, 1소위에서의 논의 속개 ⇨ 쟁점에 대한 합의점 등 도출
- ▶ [9월 이후 정기국회] ①9월 추석연휴 전까지 국정감사 종료 예상, ②예산안 본격 심사 전인 10월, 11월경 법사위 1소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 추진

■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는 **공식적 신중검토 · 사실상 반대 입장** 고수

- **對사법부** ⇨ 여러 상고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One of them)로 상고법원안 취급
- **對국회 · BH** ⇨ 의원들 상대로 입법방해 전략 구사, 반대 논리 제공

■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에 즈음하여 새로운 대응 전략 강구해야 할 상황**

- 법무부 수장 교체에 따른, 법무부의 기본 입장 변화 가능성 등 분석
 - ㄴ 신임 법무부장관의 상고법원에 대한 기본 인식, 성향, 對사법부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 등 파악 ⇨ 이를 토대로 신임 법무부장관에 대한 접촉 주체, 시기, 협상 카드 등 설득전략 수립



2. 법무부 현황 및 향후 전망

▣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 ⇨ 이중 플레이

- 표면적 ⇨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 But 상고법원안에 대하여는 신중검토 의견

☑ 4. 20. 법사위 상고법원 공청회 장○○ 검사 발제문 일부

▶ 「상고심 재판 지연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고법원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거나 이미 시행했던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6. 17. 법사위 1소위에서의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차관 의견

▶ 「상고제도 개선에 관하여 국민 여론 수렴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의견이 모아진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 앞으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실질적 ⇨ 확고한 반대 입장

- 법원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심리 발동 ⇨ 각종 궤변적 반대 논리 구성·유포
- 기본적으로 타 기관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수수방관적 태도 견지
- 다만, 대법관 증원론에 대하여는 진보 세력의 최고법원 진출을 우려하는 문제인식 가지고 있음

▣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에 따른 기본 입장 변화 여부 등

- 7. 9. 신임 김○○ 법무부장관 취임 ⇨ 現 정권 5번째 호남 출신 장관으로 법무부 수장 등극

☑ 신임 김○○ 법무부장관 프로필

- ▶ 전남 고흥 출신, 광주일고/서울법대/사법연수원 16기
- ▶ 법무부 법무심의관/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춘천·서울서부·광주지검장/부산고검장/법무부 차관
- ▶ 법조비리 관련 조○○ 부장판사 수사, 정○○ 전남도교육감 뇌물 수사 등 담당
- ▶ 특수수사, 법무행정에서 두루 능통하다는 평



- [인선 배경 등] ①현 정권 들어 주요 사정기관 인선에서의 ‘영남 편중’ 완화하기 위한 탕평 인사, ②선친 시절부터 이어온 VIP 집안과의 인연(부친인 김○ 전 의원이 1979년 전남 고흥·보성에서 무소속 당선 후 당시 여당인 공화당 입당)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우호적 평가, ③황교안 국무총리의 적극 추천

- 취임 일성으로, ① ‘믿음의 법치’, ②부정부패 척결 의지 천명

☑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사 일부

▶「공공분야의 적폐와 민관유착 비리,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후속 검찰 인사 등 내부 조직 정비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예측
 - 연수원 선배인 검찰총장과의 검찰 인사 등에 있어서의 호흡 주목됨
- 당분간 상고법원에 대한 기존의 원론적 신중검토·사실상 견제 입장에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
- (이유①) 취임 초기 전임 법무부장관의 후광에서 벗어나, 조기에 검찰 조직 장악하고, 본인 작품으로 내세울 수 있는 수사 실적 거두려는 의욕 보일 수 있음 ⇨ 상고법원안에 대하여 큰 관심 가질 여력 부족
- (이유②) 現 정권 사정라인의 역학 구도상,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주도권 행사 및 컨트롤 타워 역할 기대하기 어려움
 - VIP의 전폭적 신뢰받고 있는 민정수석의 입김 여전히 강함
 - 상관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의 영향력 및 의중을 벗어난 행보에도 한계 있을 수밖에 없음
- (이유③) 現 정권하에서 1년 2개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미 법무부 2인자로서 상고법원에 대한 기본 인식과 스탠스 구축 ⇨ 사법부와의 빅딜 가능성이나 BH의 입장 변화 등 새로운 변수 없는 상태에서 전향적 태도 기대 난망
- (이유④) 신임 법무부장관의 개인 성향상, 이미 법조계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상고법원안에 대하여, 급격한 변화보다 BH, 검찰 내부의 분위기 두루



살피며 신중한 보폭 취할 것

☑ 신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내부 인물평

(생략)

-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이 사법부에 미칠 파장은 단선적 예측 곤란
 - [부정적 요인] ①친검찰 매파인 민정수석, 국무총리의 그림자 성향 짙은 법무부장관 취임으로, BH·법무부 공조가 더욱 두터워지고 상대적으로 사법부가 소외될 가능성, ②정치계·재계 전반에 관한 사정 드라이브 현실화 될 경우, 신임 장관의 성향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정 수사에 총력 기울일 것 ⇨ 상고법원 등 사법부 현안에 대한 관심 더욱 저하
 - [긍정적 요인] ①특수수사 경험 많은 신임 장관이 사정수사의 최종 성과 거두기 위해서는 사법부 우군화가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 가지고 있을 것, ②성완중 리스트 축소 수사 의혹, 향후 사정수사 실패 가능성 등으로 검찰 개혁의 불씨가 되살아날 경우 대비하여, 사법부와의 기본적인 공조 필요성에 무게 둘 수 있음

■ 최근 내부적 현안·관심사 등

- 검사장 자리 확대 ⇨ 법무부·검찰의 최대 관심사
 - 인사적체에 따른 내부 불만 증폭의 주요 원인
 -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상고검찰청 신설은 매력 없음 ⇨ ∴ 검사장 최대 2자리 가량 불과
- 디지털 증거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 국민일보 2015. 4. 3.자 '형사소송법 개정 본격 착수' 기사

☞ 검찰, 법원의 엄격한 잣대에 위기 의식... 작년 11월 '증거법 연구회' 조직, 법 개정 추진하기까지...

- 김진태, 김도읍 의원 등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김도읍 의원안]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 방법 명시, 원격지 압수수색 허용 등



- [김진태 의원안]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규정 신설(기술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등),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규정 개정
- 학계와의 논의 등 공론화 작업 추진 중 ⇨ 7. 6.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 대검 과학수사부 공동주최로 디지털포렌식 워크숍 개최

● 중점 검찰청 설치·운영

- 지역적 특수성 등에 따라 특정 유형의 수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지방 검찰청 지정 ⇨ 수사의 전문성·효율성 추구
- ex) 서울남부지검 ⇨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 서울서부지검 ⇨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 울산지검 ⇨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 BH·정치권·재계와의 관계 등 외부 상황

● BH와 친밀관계 지속·강화

- 통진당 해산결정의 후광 여전 ⇨ 공로 인정에 따른 신뢰관계 확고
- 이병기 비서실장 취임 후에도, 비서실의 親검찰 기조에 변함 없음
- 성완중 前 의원 자살 사건으로 인해 내부 역학구도에 변화 요인 발생하였으나, 민정수석 등 검찰라인에 대한 VIP의 신뢰 여전한 것으로 보임
-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취임으로, BH와의 밀월관계 더욱 강화
- 유사 이래 최초로 현직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임명 ⇨ 법무부장관 개인 뿐만 아니라, 법무부·검찰 조직에 대한 VIP의 강력한 신뢰 표출
- 행정부 2인자로 공안통 검사 출신 기용 ⇨ 강력한 사정·공안 드라이브 메시지 표방

● 성완중 전 의원 자살에 따른 위기 국면 타개

- 메가톤급 후폭풍 예상하였으나,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총리 2명만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 마무리 ⇨ 다시 한번 BH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 도출
- 메르스 확산, 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흡입력 강한 초대형 현안들로 인해



일부 진보 언론 및 야당의 공세 잠식 ⇨ 수사결과 발표 직후 야당의 별도 특검 주장도 정치 쟁점에서 후순위로 밀려 큰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

● 오히려 정치권·재계에 대한 제2의 대대적 사정 착수할 분위기

- 신임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주도로 ‘사정 2라운드’ 준비 움직임 포착 ◀
포스트 유승민 정국을 ‘사정 드라이브’ 로 돌파하려는 BH 의중 함축

☑ 최근의 정치권·재계에 대한 수사 상황 등

- ▶ **[정치권]** 여야 재선의원 10여명 대상 내사 중이라는 소문
 - **[박기춘 의원]** 분양 대행업체의 금품로비 의혹 관련 소환 조사 임박
 -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 청탁 의혹으로 관련자들 소환 중
 - **[권은희 의원]** 김○○ 전 서울경찰청장 외압 지시 의혹 관련 위증 혐의 수사
 - **[이인제 의원, 김한길 전 의원]** 성완중 리스트 혐의 관련 추가 수사 속개
- ▶ **[재계①] 포스코 수사** ⇨ [최종 타깃]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
 - 정○○ 전 부회장 영장기각으로 주춤한 상황에서, 관계사인 동양종합건설 비자금 조성, 성진지오텍 고가인수 수사로 전기 마련 ⇨ **7. 3.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압수수색**
 - 포스코건설과 거래한 **대림산업, GS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대두
- ▶ **[재계②]** 이명박 정권 수혜기업으로 알려진 **롯데, 신세계** 등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 수사 가능성 대두

- 전임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정 정국 천명 이후 역풍을 맞았던 실패 교훈삼아,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방식의 수사 예측
- 야권 및 재계 일부와의 대립각 첨예화되더라도, BH發 사정 정국의 손발 역할 충실히 수행하여 정권 실세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 지렛대로 삼는 것이 조직에 유리하다는 판단 확고

3. 법무부 설득의 기본 방향 ⇨ 강온(強穩) 양면 설득전략에 따른 **Big Deal** 추진

▣ 상고법원안은 다른 현안과 비교불가의 절체절명 과제

- **CJ 최대 역점 사업**이자 사법부의 가장 중차대한 추진 과제 ⇨ ∴



입법 실패는 ① 대외적으로 사법부 위상 추락, ② 대내적으로 CJ의 리더십 상실이라는 최악의 위기상황 초래

- 심급체계 전반에 관한 리모델링 정책 ⇨ 신속·적정한 재판권 행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제도개선책
 - [1심] 쟁점의 조기 현출, 쟁점 중심의 충실 심리 및 실질적 증거조사
 - [2심] 심리범위 적정화
 - [3심] 대법원의 정책법원화 + 상고법원의 개별적 권리구제 기능 수행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강화

■ 그러나 법무부의 **비협조적 태도**는 상당히 **고착**되어 있고,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에 따라 큰 변화 기대할 수 없는 상황**

☑ 전임 법무부장관, 4. 8. 처장님과의 만찬 자리에서의 발언

“상고법원 도입은 일선 검찰청의 폭넓은 의견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4. 15.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행정처 기조실장·정책실장 회동 분위기

▶ [행정처] ① 상고법원안에 대한 대승적 협력 요청, ② 법무부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약속

▶ [법무부] ① 진지한 모습·발언 결여, ② 무성의하게 상고법원안의 문제점 및 각종 대안 나열, ③ 법무부는 검찰 대변 조직 아니라는 반응

☞ **진솔한 의견 교환 실패**

● [원인 분석]

- ① 법원에 대한 반발·견제 심리 확산 ⇨ 상고법원 도입이 사법부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쉽게 동조해 줄 수 없다는 얄은 발상
- ② 상고법원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現 입법추진 환경에 대한 자체 판세 분석
- ③ 실리적으로 상고법원안이 법무부·검찰에 가져다 줄 이득이 없고, 그와 맞바꿀만한 등가치 현안도 없다는 인식

■ **Big Deal을 통한 국면 타개 시도**

- 법무부가 현재와 같이 **뚜렷한 의견 제시 없이 버티기로 나올 경우**



⇒ 원론적 수준의 호혜관계 조성 요청이나 감성적·정서적 관계 정립 노력으로는 성과 기대 불가

- 상고법원안 추진의 필요성·시급성을 전면에 내세운 강은(強穩) 양면 설득전략 추진 필요

▫ [압박] ① 상고법원안에 대한 협조 없을 시, 양 기관의 관계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점, ② 법무부가 막후에서 對국회·BH 입법방해전략 구사해 온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 등 엄중 경고

▫ [회유] 법무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Deal 가능한 유력한 카드 제시 ⇒ 전면 관계 단절보다는 협상 타결이 유리하다는 섹법 착수 유도

4. 구체적 설득 전략

가. 협상의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 영장제도의 대대적 개혁 공론화

- ▣ 법무부·검찰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장제도의 변화를 매개로 활용 ⇒ 수사업무와 직결되어 있어,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 ①체포·구속영장제도의 일원화 추진

- 체포는 쉽게, 구속은 엄격히 통제하는 인신구속제도 수립 표방
- 2008년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뚜렷한 개선 논의 부재 ⇒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 도래하였다고 공표

▣ ②디지털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절차적 통제 방안 마련·통보

- 현재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사실상 일반영장처럼 운용되는 결과 ⇒ 검찰의 광범위한 별건 수사와 이를 통한 영향력 확대 초래 ⇒ 이에 대한 엄격 통제를 강구하는 방안 강구



- [ex] 수색영장·압수영장의 분리 발부 방안, 압수수색 방법의 사전 제한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 방안, 압수물 반환·폐기 의무 명시 방안,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실질화 방안, 압수목록의 교부 의무 강화 방안 등
-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들이 연구에 착수하여 가시적 연구성과 도출, 이를 토대로 ①5. 18. 경인권 영장전담법관 간담회, ②6. 2.~6. 15. 권역별 영장전담법관 간담회 개최 ⇨ 논의 결과 적절한 시점에 검찰에 통보

☑ 5. 18. 경인권 영장전담법관 간담회 논의 결과(디지털정보 압수수색 관련)

- ▶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란에 “...(컴퓨터, US, 휴대폰)...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 문구의 부기
- ▶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교부 및 목록 제외 전자정보 삭제 폐기” 문구 명기
- ▶ 현행 별지의 개정

- 언론에도 절차적 통제 방안을 공표하여 공론화하는 방안 검토

나. Big Deal을 위한 협상 카드

1) 수사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영장제도 개선 방안 제시

▣ ①체포·구속영장제도 개선

- [정책 타이틀] ⇨ 수사 효율성 제고 및 피의자 인권 보장에 기여하는 新인신구속시스템 구축
 - 법무부가 제도 개선의 주체로 나서기에 적합한 정책 과제
 - 성완종 리스트 수사 종료 후 불거질 수 있는 검찰 책임론을 희석시키거나 그에 대한 자체 개혁 방안으로 꺼내 들 수 있는 아젠다
 - 수사 편의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 간 조화로운 균형을 도모한다는 제도 개선의 명분 내세워 여론 등의 큰 관심 얻을 수 있는 방안
- [체포]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 현재 법관에 의하여 전부 심사·통제하는 방식에서 탈피 ⇨ 수사기관에



체포에 관한 상당한 재량권 부여, 수사 초기 신속한 신병 확보 가능

● [구속 심사] 체포 후 계속 신병확보 필요성 등 심사

- 사실상 체포와 구속의 일원화
- 외부에는 구속 여부에 대한 엄격 통제 방안으로 표방 가능
- 실질적으로는 체포 상태에서의 수사결과가 영장실질심사에 반영되므로, 구속을 높아질 가능성 有

● [구속 심사 후] 기소 전 보석제도와 함께 영장항고제 도입

- 법무부·검찰이 줄곧 주장해 온 영장항고제 수용
- 영장항고제를 통해 구속영장발부의 객관적 기준 수립
- 기소 전 보석제도 도입, 구속영장재청구를 영장항고제로 통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 ②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 정비 및 증거능력 인정 확대 방안

- [최근 검찰 관심사] ① 부패범죄·기업범죄 등에서 디지털 증거의 연결 저장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압수수색 필요성 주장, ② 공안사건 등에서 작성명의를 불명확한 디지털증거(ex. 북한으로부터 수신된 이메일)의 진정성립 인정에 상당한 어려움 경험 ⇨ 증거법 개정 모색

- 디지털 정보에 대한 효율적 압수수색절차 마련 ⇨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절차 보완과 함께 연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

☑ 2015. 2. 2.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자

- ▶ 압수 목적물에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포함 명시
-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보존요청 근거 마련
- ▶ 정보의 출력·복제 불가능한 경우 등 정보저장매체 압수 허용
- ▶ 압수대상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정보저장매체 등 압수수색 허용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새로운 기준 마련 ⇨ ‘反테러법’과 같이 공안사건에 특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입법 과정에서 공조 체제 구축

- 현재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모든 범죄수사에 있어서, 디지털증거에 관하여 기술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을 규정함

☑ 2015. 5. 15.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부분

- ▶ 디지털저장매체 저장 정보에 대하여 원진술자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외 디지털포렌식 조사관 증언 등 제3자의 진술 또는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도 증거능력 부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13조의2)

2) 법무부·검찰 조직 및 기능 확대 방안 제시

■ ① 검사장 자리 증설 방안

- [조직] 법무부 송무차관직(제2차관) 신설 ⇨ 그 산하에 국가송무국, 국제법무조약국 등 검사장급 보임 가능한 2개 이상의 국 설치

☑ 미국의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제도 참조

- ▶ 1870년 Judiciary Act에 의해 설치
- ▶ ①정부가 패소한 모든 사건 검토하고 상소 여부 결정, ②어떤 사건을 대법원이 심사할 것인지 의견제출, ③대법원의 모든 사건에서 미국연방을 대표
- ▶ 산하에 4명의 부차관(Deputy)과 20여명의 차관보(Assistant solicitor) 두고 있음
- ▶ 평판 높은 전문지식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받고 있음

- 상고검찰청 신설과 함께 추진 시, 최소 5명의 검사장 자리 증설 가능

- [기능①] 신설된 송무차관 조직에서 법정조언자 의견제출(Amicus curiae) 업무 적극 수행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에서 국가 의견 및 공익 대변

- [기능②] 상고법원안에 따른 대법원의 사건분류심사 절차에서, 공식적으로 사건분류 의견 개진



■ ②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검사 보임

- 파견 검사를 형사공동조 등에 투입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 법리 검토 등 역할 부여
- 대법원의 수사실무 등 형사사건에 대한 입체적 이해도 제고 ⇨ 형사재판 판례 형성에 반영
- 연구업무에 관심 있는 상당수 검사들의 선호 있을 것 ⇨ 검찰 인사 적체 해소에 실효적

■ ③ 법무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교차 파견

- 검사를 사법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형사법 관련 연구업무 부여

☑ 사법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위촉 근거 법령

▶ 법원조직법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 ②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하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 법원조직법 제76조의5(초빙연구위원)

- ① 제76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빙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법무연수원에 판사를 파견하여, 검사·수사관들 대상으로 형사재판 관련 특강, 형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업무 등 수행

☑ 법무연수원 조직 및 기능 개요

- ▶ [기획부와 교정연수부]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
- ▶ [연구위원] 형사·법무정책 수립,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 연구위원 보임자격 ⇨ 고위 공무원 단체 소속 일반공무원 or 검사
- ▶ 교수 ⇨ 자격 제한 無

- [파견요건] ① 국가기관의 파견 요청, ② 업무의 성질상 법관 파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해당 법관의 파견근무에 대한 동의, ④ 법원의 허가



- [파견요건 충족 여부] 연구업무는 형사재판분야와 밀접한 관련성 有 ⇨ 법원조직법 제50조의 「업무성격상 법관파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해당
- [파견기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연장 가능
- [검토] 직제규정(대통령령) 개정하지 않는 이상 연구위원으로 보임하는 것은 곤란, but 교수로 보임하는 것은 가능
- 수사 및 형사재판, 형사법제도 관련 법원·검찰의 상호간 인식의 간극 좁히고, 법질서 수호 및 국민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공동의 연구성과 창출

■ 4)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

- 검찰의 이른바 '안보위해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요청
- 공안사건에 대한 법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건 처리의 일관성·효율성 도모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법원에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 등에 관한 전담 재판부 설치

■ 5) 특성화법원 설치 방안

- 검찰의 이른바 '중점 검찰청 설치 방안'에 적극적으로 대응
- 법원에서도 일부 지방법원을 특정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

3) 법무부·검찰이 추진하는 형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협조 약속

■ 1) 보호수용제 도입 방안

- 상습 살인범·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에 대해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호수용제를 도입하는 방안 ⇨ 법무부가 2014년 하



반기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

☑ 2015. 4. 9. 정부 발의 보호수용법 제정안 골자

- ▶ 재범 위험성 있는 상습 살인범(2회 이상)·성폭력범(3회 이상), 아동 성폭력범(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등 흉악범죄자를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수용시설에 수용
- ▶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청구 ⇨ 법원은 1년 이상 7년 이하 범위에서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 선고
- ▶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보호수용 집행 후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 심사·결정

- 미래의 범죄가능성 예측을 토대로 사회방위를 위해 범죄자의 신체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제도
- 보호관찰명령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인 것과 비교할 때,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이 장기임
- 가출소 심사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
- 종래 법원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재범 위험성 판단의 오류가능성 등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검토' 의견 ⇨ 법사위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묵인하는 입장으로 선회 제한
- 어차피 보호수용법 제정안은 과거의 보호감호제도의 폐단에 대한 학습효과로 야당, 학계, 재야법조,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②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 도입 방안

- 실제 수사현장에서 묵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플리바게닝을 공식적으로 법제도화하는 방안
- 뇌물, 마약, 조직폭력 사건 등에서 먼저 도입하고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협상 가능
- 성 前 의원 자살 원인의 하나로 검찰의 무분별한 플리바게닝 지적 ⇨ 단기적으로는 추진의 장애 요소일 수 있으나, 오히려 검찰 내부



에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될 수 있음

■ ③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방안 (2011. 7. 정부 제출 형소법개정안)

- 범죄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구인영장 발부받아 강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협조

■ ④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 도입 방안 (2011. 7. 정부 제출 형소법개정안)

- 뇌물범죄, 범죄단체 조직범죄 등에 대하여 범죄 가담자가 범죄규명에 필수적 증언을 한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협조

■ ⑤사법방해죄 신설 방안 (2011. 7. 정부 제출 형소법 개정안)

-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하는 공무원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를 처벌하고, ② 타인의 증언 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허위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폭행·협박하거나 타인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약속·공여·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처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
- 참고인의 허위진술로 인한 수사절차의 지연, 수사인력·비용 낭비 등 문제점 해소에 기여

다. 접촉·설득 주체, 시기 등

■ 고려 사항

- 신임 법무부장관과 신속한 접촉 필요 ⇨ 새로운 법무부 수장의 상호법원안에 대한 기본 인식 파악하고, 협조 요청할 명분 발생
- 공식·비공식 면담 자리를 통해, 여러 접촉 루트를 활용한 단계적 접촉·



설득 기회 포착

● 기존 접촉·설득전략의 궤도 수정 필요한 상황

- 전임 법무부장관,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과의 담판에서 소기의 성과 없었음
- 김○○ 법무부 차관을 새로운 접촉면으로 정하여 절친인 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통해 설득 시도 ⇨ But, 역시 별다른 진척 없고, 추가 설득 여의치 않은 상황
- 곧 후속 검찰 인사 가능성 제기되고 있어, 現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기조실장과의 접촉은 시기상 한계 있음

■ [1단계] 법무부장관의 대법원장님, 처장님 공식 취임 예방 활용

- [일정] 7. 13.(월) 16:00, 대법원장님 접견 후, 처장님 포함 대법관님들 개별 방문 예정
- 양 기관 수장들간 공식적인 환담 자리로서, 양 기관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의견 교환하기에 매우 적합
- 대법원장님 또는 처장님께서, ①상고법원안에 대한 원론적 협조 + 상고법원 의제 다룰 수 있는 양 기관 실무자간 면담자리 속개 요청, ②법무부·검찰의 주요 현안 관련 건의·애로사항 수렴 의사 등 피력
- 원론적 차원일지라도, 법무부장관의 상고법원안에 대한 견해 및 사법부에 대한 요청 사항 등 간파되면, 이를 매개로 설득 전략 수립 및 빅딜의 전기 마련 가능할 것

■ [2단계] 고교 동창인 법원행정처 차장 접촉을 통한 호혜 분위기 조성

- 인적 친분 관계를 활용한 정서적 접근 시도
- 법무부장관 공식 취임 방문 일정 및 7월 임시국회 상황 등 고려하여, 7월 마지막 주에 면담 추진



- 기본적으로 법무부장관 취임 축하 자리로 주선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에 대한 동류의식을 견고히 하는 기회로 활용 ⇨ 향후 실무진간 소통창구 개설 기정사실화하는 데 주력

■ [3단계] 행정처 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 기조실장간 실무진 회동

- [면담 시기] 검찰 후속 인사, 국회 일정 등 고려 ⇨ 8월 임시국회 임박한 시점

- 7월 말, 8월 초 검찰 인사 예상되는 경우, 8월 중순경 법무부의 새로운 진용과 면담하는 것이 효과적
- 7월 임시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의 법률안 심사결과 분석 필요, 특히 검찰 출신 의원들의 전반적인 스탠스, 발언 내용, 강도 등 정밀 분석 ⇨ 대응 기조, 논리 등 재점검
- 8. 16.경 개의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임박하여, 최종 설득의 자리로 마련

- 최후 통첩식 협조 요청

- 영장제도 개선 방안, 법무부 · 검찰 조직 확대 방안, 효율적 수사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 등과 상고법원 도입과의 Big Deal 제안
- 상고법원 도입은 좌절 불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고지
- 협상 결렬은 양 기관의 전면적 관계단절 결과 초래할 것임을 경고 [끝].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홍보 방안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5. 7.

상 고 법 원 홍 보 RESTART팀



< 요약 >

I. 검토 배경

■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홍보전략을 모색해야 할 전환점(Turning-Point) 도래

- 지금까지 법사위원 등 국회의원에 대한 개별적 접촉·설득 이상으로, 언론을 통한 여론戰에 매진
- 그러나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상고법원 법률안 통과 가능성 매우 희박
- 국회 법률안 심의 장기화 대비 치밀한 입체적 홍보 대책 필요

현재까지의 상고법원 홍보 활동을 큰 틀에서 점검 ⇨ 功過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홍보 전략 수립

현재 언론을 통한 이슈화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도록 지속적인 여론 Boom Up 방안 모색

일반 국민에 대한 파급력 증강 및 사법부 내부 구성원 이해도 제고를 통해 대세적 공감대 확산시킬 수 있는 홍보 방안 필요

■ 과거의 조망을 바탕으로 미래 홍보 방안의 재설계 추진

- Zero-Base에서 초기 홍보 착수한다는 오픈 마인드로 효과적인 홍보 방안 구상
- 最適의 하반기 홍보 전략 설계 ⇨ 상고법원 도입에 유리한 입법환경 구축

II. [과거의 조망] 기존의 상고법원 홍보 현황 및 성과, 개선점 등 분석

1. 홍보 현황 등 개요 (2014. 12. 1. ~ 2015. 7. 2.)

법률안 발의 직전인 2014. 12. 1.부터 2015. 7. 2.까지 신문, 방송 등 전통 홍보 매체를 활용한 다각도의 정책 홍보 실시

가. 신문

- [기사량] 2014. 12. 1.부터 2015. 7. 2.까지 일간신문 기사 약 **170건**



- 2014. 12. 1.경 대법원장님의 상고법원 도입 의지 천명 기사 후, 지속적으로 긍정적 기사와 이에 대한 반론 기사 등 게재

나. 방송

- [1단계] 노출期 (2014. 12. 19. 법률안 발의 ~ 2015. 2. 23. 법률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 [YTN] 대법원장님 신년사로 화두 제시/[연합뉴스 TV 등] 상고법원 입법 추진 상황 등 소개
- [2단계] 랜딩期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후 ~ 2015. 4. 20. 법사위 공청회 개최)
 - [연합뉴스TV] 상고법원 공청회 개최 관련 방송
- [3단계] 확산期 (법사위 공청회 후 ~ 2015. 7. 초)
 - [JTBC 썰전] 상고법원에 대한 장단점 소개/[KBS 등] 서울변호사회 상고법원 찬성, 변협과 이견/[연합뉴스TV] 대법원 한해 재판 4만 건...상고법원 해법?

다. 그 외 상고법원 광고 및 이미지 홍보 등

1) 상고법원 광고

- 상고법원 핸드북 제작·배포(2014. 11.)
- 네이버, 다음카카오 브랜드검색 광고(2015. 3. 4.부터)
- 매일경제 전면 광고 집행(2015. 4. 27.)

2) 이미지 홍보 등

- [1차 포스터 게시] '바를 正' 자 활용한 캘리그래픽 홍보 포스터
⇒ 지하철 역사 등 게시
- [1차 홍보 동영상(상고법원의 새로운 시작) 제작·유포]
 - 지하철 행선 안내기 및 객차 내 모니터를 통해 송출 (6. 1.~ 6. 30.)/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에 탑재
- **종합적 뉴미디어 홍보 플랜 가동**
 - 2015. 5. 20.경 상고법원 뉴미디어 홍보팀 구성·운영 ⇒ 온라인 등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한 시각적·입체적 홍보 강화를 위해 2차 홍보 플랜 추진



- **상고법원 홍보 웹툰 제작·게시 (2015. 7. 1.)**

‘대법원과 함께 하는 상고법원 이야기’ 웹툰 제작 ⇨ 대법원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게재

- 흥미유발형 2차 홍보 동영상, 포스터 제작 중

2. 홍보 활동 분석

가. 언론보도 분석

■ 1단계 노출期 (2014. 12. 19. 법률안 발의 ~ 2015. 2. 23. 법률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 [성과] 상고법원에 대한 최초 정보 제공 및 인식의 단초 형성
- [시행착오] ①전방위 홍보에 착수하지 못한 사이, BH·법무부·민변發 반대 기고문 등 게재, ②상고법원 홍보 전략 부재
- [여론의 전반적 반응] 새로운 제도 도입 공표되었으나, 충분한 정보 부족

■ 2단계 랜딩期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후 ~ 2015. 4. 20. 법사위 공청회 개최)

- [특징] 상고법원의 필요성에 대한 동아일보 등 보도 이후, 찬성과 반론의 과정 반복
- [가장 효과를 거둔 보도] ①동아일보 2. 27.자 “대법 더 나은 사법서비스 제공 위해 상고법원 도입해야”, ②한국경제, 한국일보 4. 14.자 범칙금까지 상고하는 현실 소개 기사
- [성과] ①상고법원 도입 논의에 대한 불씨 점화, ②상고법원의 필요성에 대한 각종 기획기사, 기고 등을 통한 인식 형성
- [시행착오] 언론기고, 기획기사에 집중한 나머지 상고법원 도입 논의가 사법부만의 담론이라는 평가 초래
- [여론의 전반적 반응] ①여전히 일반 대중의 무관심, ②일부 전문가 계층의 상고법원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 확산

■ 3단계 확산期 (법사위 공청회 후 ~ 2015. 7. 초)

- 법사위 공청회 직후, 다시 반대 세력의 기고문 활발한 게재 및 변호사단체의 조직적 반대여론 확산 시도
- But, 5. 18. 서울변회 상고법원 지지 천명 이후, 5. 28.자 조선일보



1면, 동아일보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분위기 반전

- 지역 변협간 찬성, 반대 입장이 대립교차 발표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상고법원의 노출이 많아지고, 언론사의 관심도 증대됨
- [가장 효과를 거둔 보도] ①5. 28.자 조선일보 1면, 같은 날 동아일보 기획기사, ②매일경제 1면 6. 18.자 경제적 효과 특집 기사
- [성과] 상고법원 입법 통과가 가시화되었다는 우호적 분위기 조성
- [시행착오] 특정 메이저 언론의 기획기사에 대한 반발로, 일부 마이너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서 비판 기사 작성 동기 조성됨

■ 매체 종합 분석

- 조선, 동아, 중앙, 매경, 한경, 법률신문이 상고법원의 필요성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와 기고문을 주로 게재
- 경향, 한국, 한겨레, 내일신문의 경우 상고법원 반대론자의 기고글을 다수 게재, 다만, 기자 작성 우호적 기사도 발견

나. 하반기 홍보 활동을 위한 착안점 등

■ 언론보도 관련

- ①상고법원 도입의 실제적 필요성, 기대효과를 강조한 기사 효과적
- ②객관적 지표 제시 필요 ⇨ “긍정적인 지표가 긍정적인 보도를 낳고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
- ③구독률이 높거나 영향력이 큰 언론매체에 적극적인 홍보 필요
- ④진보 언론에 대한 컨트롤 필요

■ 기타 홍보 활동 관련

- ①여러 다양한 홍보 소재 활용한 집중력 있는 홍보 추진
- ②전파 기능 강한 인터넷, SNS 채널 통한 홍보 진작

III. 하반기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홍보 방안

1. 하반기 홍보 활동의 기본 방향, 목표 및 타깃, 일정 재점검

■ 기본 방향

- 하반기 법률안 심사 일정에 조용한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



- 홍보 활동의 선택과 집중

■ 주안점

- ① 참신한 콘텐츠 확보
- ② 인지도·설득력·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방법론 모색
- ③ 상고법원 홍보에 대한 피로감을 불식하고, 우회적으로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 정당성 등을 어필할 수 있는 Sub 홍보 소재 개발

■ [목표] 홍보활동 [4단계-상고법원 대세期] 구축 ⇨ 하반기 입법성사 견인

■ [타깃] 직접적-일반국민, 간접적-국회의원

- [직접적 타깃] 일반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대중의 관심 유인
- [간접적 타깃] 국회의원
일반 국민, 여론 주도층의 찬동 분위기가 국회의원들에게 유입되도록 함

■ 방법

- ① 홍보 매체의 효과적 활용 방안 모색 ⇨ 홍보 매체 다층화
- ② 신선한 홍보 콘텐츠 발굴
대중에 대한 인지도·호감과 전문성을 갖춘 홍보源 발굴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감성적이며 이미지 강조하는 홍보 소재 제작

■ 일정

- ① 하반기, 길게는 12월까지 여론의 불씨가 소진되지 않도록 장기적, 산발적 홍보 일정 마련하되, 집중공략시기 설정
- ② 7, 8월 하반기 초기에 사실심 충실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2. 상고법원 대외 홍보 방안

가. 홍보 방안 수립을 위한 고려 사항 ⇨ 사법부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 획득

■ 진정성에 대한 주요 지표 제시



- [핵심 지표] 대법관 다양화로 표방할 수 있는 가치의 다양화 추구 ⇨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가 반영된 대법원 판결의 지속적인 선고
- '사실심 충실화'의 논의 주도 필요
- 사법부의 발전을 위한 큰 그림 보여주기 ⇨ 상고법원은 '일부'에 불과
- 핵심으로 인식되는 부분의 선제적 희생 의지 천명
 - 사법부 독립의 본질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외부의 비판 적극 수용 (상고법관에 대한 대법원장님의 인사권 내려놓기 등)

나. 신문을 통한 상고법원 홍보방안

1) 기사 아이템

- ①대안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법사위원 전수조사**
- ②**상고심 소송물 가액, 소송당사자 숫자** 등 객관적 수치 자료 제시
- ③**인터뷰, 제언, 지상토론** 등
 - 상고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각계 전문가 10인의 제언**
 - **긴즈버그 대법관 인터뷰** 등 (8. 3. ~ 8. 7. 방한 예정)
 - 상고법원 운영 방안에 대한 **미국 판사들의 제언**
미연방 판사 ○ ○, 뉴욕 주 판사 ○ ○ ○
 - **前대법관 인터뷰**
조○○, 김○○, 김○○, 박○○, 전○○ 등
 - **대안 구체화** ⇨ 각 대안별 의견 수렴(지면 토론, 인터뷰 등)
법학교수 5인의 찬반 의견 등 '대안에 대한 토론 붙이기'
- ④**중앙지 기고문**
 - 15개 중앙지 7월~10까지 1회씩 기고 목표 ⇨ 1주당 1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해럴드경제	서울	서울경제	국민	세계	한국	한국경제	내일	동아	경향	문화	매일경제	한겨레	중앙	조선



■ 5기타 아이템

- ①12월 발의 ~ 7월 임시회 논의 종합 기사, ②지상 좌담회, 논설 위원 칼럼 등, ③상고법원 설치 후 사건 분류 및 재판 진행 시뮬레이션, ④제3자 의견서 제출 제도 이슈화, ⑤대법원장님 취임 4주년 기념 관훈 토론회 등, ⑥대법관 1인 증원 시 비용 VS 상고법원 판사 1인 증원 시 비용, ⑦상고법원 도입 이후 하급심 판사의 경력 변화 거의 없음, ⑧일본, 독일 등 상고허가제 실시 국가에서 당사자 및 변호사의 상고심 재판 기회에 대한 기대감(상고심 기회의 불충분 보장에 대한 불만)

2) 언론사 효과적 활용

- **법조출입기자설명회 개최** ⇨ 전체 기자단과의 소통 및 정보 공유
- **주요 메이저 언론과의 호혜적 관계 유지**
- **중소 언론의 찬성 입장 합류 및 일탈적 반대 기사 방지**
- **진보 언론의 악의적 반대 공론화 시도 억지**

다. 방송을 통한 홍보방안

1) 라디오

■ 시사 프로그램 종류

- 아침프로
MBC 신○○의 시선집중(매일 아침 7시~9시)
KBS 안녕하십니까 홍○○입니다(매일 아침 06:25~06:56 / 07:15~07:55)
CBS 박○○의 뉴스쇼(월~금 07:30~09:00 / 토 07:15~09:00)
TBS 고○○의 열린 아침(매일 아침 7시~9시)
- 저녁프로
CBS 시사자키 정○○입니다(월~토 18:00~20:00) : 집중 인터뷰(15~30분)
KBS 공감토론(노○○ 교수, 월~금 19:20~20:56) : 3~4명 패널 초대

■ 방송 목표

- 월 1회 라디오 방송 노출 목표
- 시사쟁점에 대한 집중 보도 + 인터뷰 형식 + 토론 형식 ⇨ 모두 추진



- 적절한 인터뷰 대상자 섭외

2) 지상파

▣ 프로그램 종류

- ① 메인 뉴스 속 심층보도
MBC 뉴스플러스 형식, 뉴스 속 심층보도 코너 섭외
- ② 뉴스 스튜디오 대담
KBS 밤 11시 뉴스라인 - 이슈&토크 : 전문가 설명과 분석(5-6분)
SBS 밤 12시 35분 나이트라인 - 배○○의 0시의 인터뷰 : 전문가 초대 인터뷰(3-4분)
- ③ 심층보도
KBS 취재파일 K(금 22:50)/ MBC 시사매거진 2580(화 22:00)
- ④ 토론
MBC 100분 토론(화 24:20-01:40)/ KBS 생방송 심야토론(금 23:40-01:00)
- ⑤ 좌담
KBS 시사진단 / KBS 일요진단 /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 방송 목표

- ①은 7-8월, ②는 10월경 집중 추진
- ③, ④, ⑤는 각 프로그램 장, 단점 검토 필요 ⇨ 방송국별 1개씩 9-10월경 추진

3) 종편

▣ JTBC, 채널A, TV조선 중심

- JTBC 뉴스룸, 채널A 쾌도난마, TV 조선 장○○의 시사탱크, 시사토크 판 등 주요 시사 프로그램 보도 추진
- 방송국 섭외 + 주요 출연진에 대한 설득 병행 필요

성명	경력 등	주요 출연 채널	비고
김○○	변호사	TV 조선, JTBC, 채널 A, YTN, MBN 등	
여○○	변호사	TV 조선, JTBC, 채널 A, YTN, MBN 등	
정○○	변호사	TV 조선, JTBC, YTN, MBN 등	
양○○	변호사	TV 조선, JTBC, MBN 등	여성
백○○	변호사	TV 조선, YTN, MBN 등	



장○○	변호사, 참여연대	JTBC, MBN 등	
양○○	변호사	YTN, MBN 등	
손○○	변호사, 진보성향	TV 조선, 채널A, YTN	
김○○	변호사, 검찰출신	JTBC, YTN, MBN 등	
박○○	변호사	채널 A, YTN, MBN 등	
최○○	변호사, 대한변협 대변인	TV 조선, YTN, MBN 등	
그 외 강○○, 전○○, 강○○ 변호사 등			

라. 학술지, 토론회 등

1) 논문 발간

- ▣ ①경제적 효과(허○○ 교수)/ ②헌법 쟁점 정책연구용역(김○○ 교수)/ ③상고법원안 설명 및 대안 소개(강○○ 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

2) 세미나 등

- ▣ 공동 학술 세미나(민소법-형사법-공법) 또는 학회별 토론회
 - 주제 : “상고법원 + 하급심 강화”
 - 형식 : 법사위 위원장 주최 정책토론회 형식 고려

마. 뉴미디어 홍보 방안

▣ 2차 홍보 동영상 제작 · 유포

- 1차 홍보 동영상 미비점 보완한 시청자 흥미유발형 후속 동영상 제작 ⇨ 압축된 메시지 전달, 단순 · 간결 · 세련된 이미지 표출
- 현재 2, 30대 젊은 세대를 주요 타겟으로 한, 빠른 랩 음악을 배경으로 애니메이션 형태의 동영상 제작 중 ⇨ 7. 20.경 제작 완료 예정

▣ 웹툰, 유니버스식 만화책 제작 · 유포

- 12회 생활툰 연재 방식으로 제작 계획 ⇨ 7월 중 각급 법원 홈페이지, 지하철 행선기 등에 업로드하고, 네이버 웹툰 게시판 등 인터넷 포털에도 노출시키는 방안 추진
- 상고법원, 사실심충실화, 법관의 일상, 재판 관련 에피소드 등을 소재로 한 유니버스식 만화책 제작 · 발간 ⇨ 각급 법원 종합민원실, 도서관 등에 비치



■ 인터넷의 전파 기능을 극대화하는 바이럴(Viral) 마케팅 전략 구사

- ①검색엔진 최적화 전략 ⇨ 대법원, 재판, 상고 등 검색율이 높은 연관 키워드와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소스로 활용하여 상고법원이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노출되도록 하고,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으로 노출 빈도와 강도를 유지·관리시키는 전략
- ②키워드 전략 ⇨ 연관 키워드(대법원, 재판, 상고 등), 시즌 키워드(7월의 제헌절, 9월 대법관 청문회 등), 이슈 키워드(상고제도 개선, 사실심중실화 등), 브랜드 키워드(사법부, 자유, 평등, 정의 등)를 월간 조회수 중심으로 선정하여, 해당 키워드 입력 시, 상고법원이 검색되어 관련 정보 제시되도록 하는 전략

바. 그 외 사법부 내부 자원 활용한 대국민 홍보 방안

■ 상고법원 팸플릿 제작·유포

- 상고법원 개요 설명한 2~4면 분량의 팸플릿 제작
- ①각급 법원 종합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법원 방문객들에게 상고법원 제도 안내, ②코트넷, 대법원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게재, ③대한법률구조공단, 시청, 구청 등 지역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얻어 팸플릿 비치하는 방안 추진

■ 각급 법원 종합민원실 등 영상 디스플레이를 통한 홍보

- 각급 법원(지원 포함) 종합민원실, 협의이혼대기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 디스플레이에 상고법원 홍보 동영상, 웹툰 등 탑재하여 송출
- 소송 이해관계인이나 민원인이 대기 중 자연스럽게 상고법원에 대한 인식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

■ '대한민국 법원의 날' 행사와 연계한 홍보

- '대한민국 법원의 날' 홍보 자료 등에 상고법원 웹툰, 포스터 등 게재
- 9. 13. 방영 예정인 KBS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에서 상고법원 관련 문제가 나오도록 추진

■ 법원 방문하는 일반인, 학생 대상 견학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 각급 법원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법원 견학 프로그램 중 '판사와의 대화' 코너에서 상고법원 제도의 취지, 장점 등 설명

■ 사법연수원의 사법교육 직무연수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 [프로그램 현황] 동하계 방학기간 중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사회과 및 생활지도업무 담당 교사 우선) 40여명 대상으로 사법부 소개, 법교육론, 재판절차 안내 등 강좌 개설
- 사법부 소개 또는 재판제도 안내 강좌에서 상고법원의 취지, 개요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교사들의 상고법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시키는 방안 추진

▣ **각급 법원의 국민과의 소통 행사 활용**

- 각급 법원에서 실시하는 여러 형태의 국민과의 소통 행사에서 상고법원에 대한 소개, 홍보 실시

순번	법원	사업명	시기	행사 개요	홍보 방안
1	춘천지법	춘천법원 라이딩 행사	2015. 7. 11.	법원 가족, 법조출입 기자 참여하는 동해안 자전거 라이딩 행사	통일전망대에서 상고법원 플래카드 게시, 상고법원 기원 이벤트 개최
2	서울고법	농촌법률학교	2015. 7.-12.	법관이 농촌지역 방문하여 지역주민에게 법률강의 실시	상고법원 제도 강의 내용에 포함
3	대전고법	대전시립교향악단 초청음악회	2015. 9. 10.	다문화 가정, 장애인, 보육원 아동 등 초청 음악회 행사	행사 도입부에, 상고법원 홍보 동영상 등 상영
4	대구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2015. 12.	일반 시민과 소외 계층 초청하여 음악회 개최	"
5	서울남부지법	야구 데이	2015. 8.	법원가족이 지역주민들과 프로야구 관람	야구장 전광판에 상고법원 동영상 등 송출
6	대구지법	UCC 공모전	2015. 7.-9.	학교폭력, 신종범죄 대책 등에 관한 UCC 공모 및 시상	공모 주제에 상고법원 포함
		EBS 리틀소시움 대한민국 법원의 날 행사	2015. 9.	지역 어린이 직업체험시설인 EBS 리틀소시움 법원체험관에 대한 지원 및 무료 초청 행사	법원체험관 코너에 상고법원 안내 부분 설치
7	광주지법	토크콘서트	2015. 9.-11.	사회 각계각층을 초청하여 바람직한 사법부의 모습 등에 관한 토크 콘서트 실시	토크 주제로 상고법원 포함시켜 공론화



8	전주지법	법조삼성 토크 콘서트	2015. 9.	대한민국 법원의 날 을 기념하여 KBS와 공동으로 법조삼성 토크 콘서트 프로그 램 제작 방송	"
9	창원지법	지역방송국(KN N)과의 공동캠페인	2015. 9.	일반인이 관심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 원이 설명하고 해결 책 제시하는 영상물 제작, 송출	상고법원 관련 내용 추 가

3. 상고법원 내부 홍보 방안

가. 내부 인식 현황 및 기존 소통 방안 점검

1) 점검 필요성 및 방법론

■ **현황 점검 및 성과 분석을 통해 하반기 내부소통 방안의 방향 설정**

■ **구체적 점검 방법 및 성과 분석 방향**

● ①다층화, 다각화된 의견 수렴 + ② 기존 내부 소통방안의 성과 분석

● 성과 분석 방법

①몰입도를 높이는 긍정적 요소 및 ②반발감 초래하는 부정적 요소 추출
내부 소통의 [1단계 목표]인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제공 여부 및 [2단계
목표]인 공감대 형성과 심정적 결속 강화 목표성취 여부 및 기여도 분석

2) 내부 인식 현황 점검

■ **전반적 인식 현황 개관**

● ①상반기에 비하여 관심도와 정보 수준 향상 ②법관들의 관심은 대부분 인사제도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표명 ③상고법원 도입의 불가피성에 대하여는 공감대 확산 ④직급별·계층별 관심도 편차 여전히 큼

● 주로 제기되는 반대 의견

▶ 실질적 의견수렴 없이 형식적 의견수렴 ▶ 대법원의 사실인정 개입이 원인인데, 상고법원 설치로 우수 자원 독점하고, 하급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 ▶ 사법부 상층부에만 좋고, 평판사들에게는 좋은 점 없음 ▶ 인위적으로



승진 대상 보직 신설하여 법관 관료화가 심화

■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이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3) 기존 소통 방안 평가

- 사법행정라인을 중심으로 한 정보제공형 소통이 중심을 이룸 ⇨ [1단계 목표 일부 달성] + [2단계 목표 미흡]
 - ⇨ 정서적 교감 강화 및 새로운 내부 소통축으로서 허브(HUB) 법관 모색 필요

나. 하반기 내부 소통 강화 방안

1) 추진 목표

- ① Boom-Up 상태 지속 유지/② one voice를 넘어 적극적인 홍보대사 역할 부여/③ 법원 내부 상향식 추동력 확보 및 일반직 공무원까지 공감대 확산

2) 구체적 소통 방안

■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설득 방향 설정**

- 계층별·직급별 관심사항 추출
 - 지법부장 이상 그룹 ⇨ 상고법원 판사 규모 및 고법부장 공석 규모 등 인사에 미치는 영향, 사법부 위상에 미치는 영향, 고등법원 형해화 우려
 - 단독판사 그룹 ⇨ 상고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등 인사사항, 상고심의 사실인정 개입 강화 우려, 하급심에 대한 불신 악화 및 법관 관료화 우려
 - 배석판사 그룹 ⇨ 상고법원과 일선 법원, 사실심 충실화 등의 관련성
-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설명 전략①] 지법부장 이상 그룹 ⇨ **비전 공유**
 - ① 상고법원 신설에 따른 대법원의 정책법원화 ⇨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 위상 강화**
 - ② 상고법원의 충실한 권리구제기능 및 심리불속행 폐지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 국민의 만족도 제고로 사법부 전체 위상 강화**
 - ③ **심급체계 전반에 관한 리모델링 정책** ⇨ 사법부 장기 비전
 - ④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 높다는 **긍정적 메시지 전달**
-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설명 전략②] 단독판사 이하 그룹 ⇨ **오해 해**



소를 통한 부정적 선입견 불식 및 구체적 이해관계 설명

①도입필요성과 배경에 대한 근본적 오해 해소

②사실심 관여 및 관료화에 관한 우려 불식

③바람직한 재판 구현 및 법관의 자부심 고취 방안임을 안내

-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설명 전략③] 직급별 인사 관심사항 안내

■ 이해도 제고를 위한 Q&A 자료집

- 법원 내부용 심층 Q&A 자료집 준비

- Q&A 자료의 효과적 활용

①경력별 연수, ②각급 법원장들이 티타임 등에서 활용, ③각급 법원 워크숍, 법관 간담회, 직급별 판사회의 등을 통해 정보 제공

■ 비공식 순회 간담회

- 법원장 순회 간담회

[목적] ⇨ ①**대내적으로**, 이해도 제고 및 내부 결속 방안에 대한 쌍방향 의견수렴 ②**대외적으로**, 지역 언론, 유관기관 또는 인사를 통한 홍보 방안 등 논의

[시행 형태 및 일정] 비공식적 회합 형태 ⇨ 수도권 7. 7. / 충청·호남권 7. 31. 및 영남권 8. 5. 예정

- 각급 법원 비공식 순회 간담회

필요성 ⇨ 대면 간담회에서의 스킨쉽과 피드백을 통해 공감대 형성과 심정적 결속 강화 + 소수라도 적극적 지지자 필요 등

지향점 설정 ⇨ 간담회 참석법관이 향후 각급 법원 내부 소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허브(HUB) 법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제 ⇨ 상고법원을 중심으로 사실심 충실화, 경력법관 임용 등 주요 사법정책 현안을 아우르는 주제로 진행할 필요

대상 및 주관자

지법부장 간담회 ⇨ 사법정책실장 등 실장급 주관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 간담회 ⇨ 사법정책실 심의관 등 주관

⇨ 단, **실득효과 및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해** 부장급 이상의 주관도 검토

구체적 형태 ⇨ 만찬을 통한 소규모 모임을 사적인 모임과 유사하게 진행

한정된 인원이 **동기 부여에 유리한** 점 등 고려

세부 일정(안)



▶ 7월 4째주 ⇨ ① 서울동·남·북·서부지법 각 법원별 **단독판사 1명, 배석판사 1명** **합계 8명** ② 서울 소재 모든 법원(고법판사 포함)의 **지법 부장급 10명** (서울중앙 및 고등 각 2명, 나머지 법원 각 1명)

▶ 7월 5째주 ⇨ **서울중앙 단독 및 배석** 각 3명, **행정·가정 단독 및 배석** 각 1명 **합계 10명**

▶ 8월 1째주 ⇨ ① 수원·인천·의정부 법원별 **단독판사 2명, 배석판사 1명** ② 위 각 법원 **부장** 각 3명

▶ 8월 2째주 이후 매주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시행 ⇨ 2째주 춘천 및 대전권역, 3째주 대구권역, 4째주 부산권역, 9월 1째주 광주권역

간담회 결과 활용

① 간담회 결과 정리·분석 ⇨ **하반기 내부소통 및 홍보 전략에 활용**

② **허브 법관들의 향후 활동 지원** ⇨ ① 지속적인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소속감 및 책임감 부여** ② **상고법원 논의에 관하여** 각급 법원 기획법관과 상호보완작용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사후 지원 및 점검 철저

- 각급 법원 소식지 및 법원사람들 등의 매체 활용

지속적·반복적 매체 + 코트넷보다 **친근한 접근 가능**

상고법원 경품 퀴즈 등의 **소프트 아이템 활용** 가능 ⇨ 8월호부터 실시

▣ 그 밖의 **준법원적 홍보·소통 방안**

- 내부용 상고법원 해설 동영상 속편 제작
- 전국 법관 토론회 개최 방안
- 코트넷 상고법원 게시판 효율적 활용
- 경력별 법관 연수(9~10월 예정) 활용

4. 사실심 충실화 홍보 방안

가. 홍보 필요성

▣ 상고법원 법률안 국회 심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필요

- ① 법원 내부, 언론·국회 등 **피로감 최소화**, ② 입법 활동 공백기에 법원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사전 차단**

▣ 법원 추진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상고법원 입법 추진 동력 증대 +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나. 홍보 목표(Goal) 정립



- ① 상고법원 정책 추진의 진정성에 대한 국민들과 법원 내부의 신뢰 제고
- ②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신뢰 제고
- ③ 대법원장님의 사법발전계획 확인과 이행 의지 재천명

다. 홍보 타겟(Target)

- 일반 국민 ⇨ 정책 추진의 '일관성' 강조
- 국회의원 ⇨ 새로운 프레임(Frame) 제공
- 법원 내부 ⇨ 정책 추진의 '진정성' 강조

라. 홍보 핵심가치(Core Value)

- 법원 정책 추진의 **일관성, 진정성**에 대한 이해
- 법원 정책 추진을 **실감**나게 예고
- 법원 정책에 대한 **친밀도** 향상

마. 홍보 방법

- **신문 등 전통적 지면 매체 활용**
 - 그간 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노력, 최근의 사실심 충실화 개선방안 등에 관해 **특집 기획 기사** 게재
 - 개별 개선방안에 관해 관련 전문가의 **우호적인 기고문** 게재 등
- **퍼블리시티 스텐트(Publicity Stunt) 활용**
 - 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 도입,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개선 등 사실심 충실화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하여, 언론의 관심 유인

바. 홍보 일정 ⇨ 2015. 7. ~ 10.

- 상고법원 입법 활동 공백기를 채우고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홍보 ⇨ 2015. 7.~8.에 집중적 홍보 실시
- 상고법원 입법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홍보전략 최적화

사. 홍보 콘텐츠

1) 개요



- 최근 약 10년 동안 사법부가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기울여 온 노력 소개, 그간의 추진 경과와 최근의 개선 노력이 같은 지향점을 향한 일관된 정책이었음을 부각
- 민사, 형사, 가사 분야별로 사실심 충실화 추진성과와 최근의 개선노력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

2) 예시(민사)

■ 전체적인 흐름

- 신민사사건 관리모델의 도입(최○○ 대법원장님) ⇨ 구술심리 강화(이○○ 대법원장님) ⇨ 1심 집중(양승태 대법원장님)
- [시기를 관통하는 공통 이념] “사실심 충실화를 통한 국민의 권리 보장”

■ 상세 설명

- 사실심 충실화의 지향점 제시 ⇨ 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② “국민을 위한 합리적 사법제도 구현”,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기여하는 법원” 구현을 통한 국민의 신뢰 확보
- 사실심 충실화의 구체적 목표 부각시키는 홍보 아이템 발굴
 - ① 훌륭한 재판역량 확보 관점 ⇨ ①법관의 역량 강화, ②심리여건의 개선, ③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판역량 최대화, ④효율적인 사건 관리, ⑤법원의 전문성 확보
 - ② 만족감을 주는 심리방식 운영 관점 ⇨ ①당사자의 참여 기회 확대, ②당사자와의 소통 원활, ③당사자 예측성 확보, ④투명성 강화, ⑤편리성 제고
 - ③ 합리적인 사법제도 인프라 구축 관점 ⇨ ①영상전송에 의한 증인 등 신문방식 도입, ②문서제출명령 제도의 개선, ③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 도입, ④당사자의 소송상 진술방식 개선, ⑤감정절차의 개선, ⑥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현실화, ⑦간접강제금 제도 정비 및 기준 마련
- 사실심 충실화 정책이 견인할 기대효과 홍보 ⇨ 재판의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질적 보장
 - ①분쟁해결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② 이상적인 심급구조 실현 노력, ③심급별 재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 역할에 맞게 실무 운영“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는 포인트 선명화 ⇨ 지연의 정도를



한 심급이 아닌, 전체 심급을 통틀어 분쟁이 실질적으로 종결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파악

[구체적인 실천 목표] ①1심 집중(법정 중심의 심리, 충분한 쟁점심리, 폭넓은 증거조사, 절차 협의 강화), ②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③상고심 구조의 재편

■ 사실심 충실화 개념도 : 별지 표 참조

아. 홍보 계획(안)

1) 세부 계획(안)

■ 법률신문 특집 기획 기사

● 사실심 충실화 특집 기획기사 2회 연재

①최근 10여 년 동안 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노력 정리·소개, ②같은 지향점을 추구하는 최근의 사실심 충실화 개선 정책 공표

[필자] 법률신문 기자(법원행정처에서 기사 자료 제공)

[시기] 2015. 7. 하순 ~ 8. 초순

■ 중앙 일간지 기고문 게재

● 사실심 충실화 논의의 이념적 근거에 관한 기고

[주제] ‘법의 지배 확립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실현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 사실심 충실화 정책

[필자] 명망 있는 헌법학 교수

[시기] 2015. 7. 하순

●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에 관한 기고

사실심 충실화의 궁극 목표가 이상적인 심급 구조 실현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는 기고문

[필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유○○ 교수(민소법 전공,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민사소송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 적극 찬성론자)

[시기] 2015. 8. 중순

● 사실심 충실화, 상고법원 정책을 큰 그림으로 조망하는 명망가의 기고

전 심급 체계의 리모델링 차원에서 사실심 충실화 논의와 상고법원 정책을 거시적·통합적 시각에서 조망



[필자] 권위 있는 법조 원로계 필자 물색

[시기] 2015. 9. 초순(정기국회 국정감사 이전)

■ 정책세미나 개최

● 국회의원 주최 정책세미나 개최

[주제] 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의 도입,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개선 등

[주최 국회의원] 전해철 의원(또는 김진태, 김도읍, 이한성 의원)

[기대효과] 언론의 관심 집중 유도 및 상고법원 반대 의원과의 협력 관계 형성

[시기] 2015. 8. 하순

■ 유관기관 합동 심포지엄 등 개최

●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현실화 공동 심포지엄 개최

[주최] 법원행정처, 법률신문, 대한변협 공동개최

[시기] 2015. 9. 하순

●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 공동 심포지엄 개최

[주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참여연대 공동개최

[시기] 2015. 10. 초순

● 특성화법원 제도 도입 공동 심포지엄 개최

[주최]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공동개최

[기대효과] 서울 중심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부산·경남 지역 여론 전환 유도

[시기] 2015. 10. 중순

■ 홍보 책자, 동영상 제작

● 사실심 충실화 정책을 소개하는 리플릿, 동영상 제작·배포

● [컨텐츠] 별지 표 참조

● [시기] 2015. 9. 중순(국회 국정감사 이전)

■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발간

●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구성, 활동경과, 회의자료, 건의문 등을 종합 정리한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향후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시기] 2015. 10. 중순(발간 시기까지의 심포지엄 개최 등 추진 경



과를 담은 보고서 발간)

5. 하반기 홍보 방안 로드맵 : 별지 참조

IV. 향후 계획

■ 수립된 홍보 방안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 점검

- 상고법원 입법 성사라는 단일 목표 수행을 위한, 홍보 콘텐츠 및 일정 조율 등 실국간 협업체제 유지

■ 홍보 콘텐츠 확보 노력 경주

- 기고문 등 기사 아이템, 방송 콘티 등 제작 후 언론사 제공
- 여론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 있고, 신선한 홍보源 발굴, 섭외
- 뉴미디어 홍보 콘텐츠(동영상, 웹툰, 포스터 등) 제작

■ 대내외 홍보 방안 실행

- [대국민 홍보] ①신문, 방송 등 전통 매체 홍보 지속, ②인터넷, SNS, 지하철 행선기, 사법부 내부 자원(국민과의 소통 프로그램 등) 등 다양한 홍보 플랫폼 전방위 활용, ③유관기관과의 정책세미나, 심포지엄, 학술대회 등 개최 추진
- [사법부 내부 홍보] ①상고법원 내부 Q&A 자료집, 해설동영상 제작·배포, ②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개최, ③ 코트넷 게시판 활용, ④경력별 연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이해도 심층화 방안 추진

■ 홍보 위기 대응 시스템 가동

- [위기 상황 파악] 상고법원 관련 부정적 보도 분위기 감지 시, 다른 현안보다 최우선하여 신속히 보고
- [대응 방안 수립] ①해당 언론사 및 기자로부터 기사 개요 파악, ② 보도 자제 및 보도 수위 톤다운 요청, ③동시에 대응 논리 및 방안 구축
- [대응 방안 실행] 반대 논지에 대처할 수 있는 논리 등 효과적인 카운터 콘텐츠로 대응 기사 게재, 관련 쟁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등 추진 ⇨ 대세에 영향 없는 단발성 돌출성 기사로 고립화시켜, 부정적 여론 확산 조기 차단



하반기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홍보 방안

2015. 7.

상고법원 홍보 RESTART팀

I. 검토 배경

▣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홍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전환점(Turning-Point) 도래

● 지금까지 법사위원 등 국회의원에 대한 개별적 접촉·설득 이상으로, 언론을 통한 여론전에 매진 ⇨ BH·법무부·민변 등 영향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명분을 가지고 돌아설 수 있도록 유인

●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상고법원 법률안 통과 가능성 매우 희박

①법사위 1소위에서의 충실한 논의 없이 6월 임시국회 종료, ② 7월 임시국회 첫 법사위 1소위(7. 16.)에서도 안전 상정되었으나 논의 불발, 7. 20. 2번째 1소위에서도 충실한 논의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경기침체 회복·경제 활성화에 국가적 관심과 역량 집중되어 있는 상황
⇨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전방위 여론 조성 등 강공 드라이브는 기관 이기주의로 비쳐져 역효과를 낼 수 있음

● 국회 법률안 심의 장기화에 대비한 치밀한 입체적 홍보 대책 필요

현재까지의 상고법원 홍보 활동을 큰 틀에서 점검 ⇨ 功過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홍보 전략 수립

현재 언론을 통한 이슈화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도록 지속적인 여론 Boom Up 방안 모색



특히 일반 국민에 대한 파급력 증강 및 사법부 내부 구성원 이해도 제고를 통해 대세적 공감대 확산시킬 수 있는 홍보 방안 필요

▣ **과거의 조망을 바탕으로 미래 홍보 방안의 재설계 추진**

- Zero-Base에서 초기 홍보 착수한다는 오픈 마인드로 효과적인 홍보 방안 구상
- 最適의 하반기 홍보 전략 설계 ⇨ 상고법원 도입에 **유리한 입법환경 구축**

II. [과거의 조망] 대국민 홍보 방안 수립을 위한 상고법원 홍보 현황 및 성과, 개선점 등 분석

1. 홍보 현황 등 개요 (2014. 12. 1. ~ 2015. 7. 2.)

법률안 발의 직전인 2014. 12. 1.부터 2015. 7. 2.까지 신문, 방송 등 전통 홍보 매체를 활용한 다각도의 정책 홍보 실시

가. 신문

- ▣ [기사량] 2014. 12. 1.부터 2015. 7. 2.까지 상고법원에 관한 일간신문 기사 **약 170건** (대법원 법원 관련기사 스크랩마스터 기준)

▣ **신문 지면을 통한 상고법원 홍보**

- 도입의지 피력

대법원장님, 사실심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발표와 더불어 상고법원 도입 의지 천명

2014. 12. 1.부터 12. 9.까지 조선, 중앙, 경향 등 해당 내용 기사화 ⇨ 상고법원에 대한 공론화의 단초 제기



문화일보 012면 사회

단독법원에 부정판사... 디스카버리제 도입...
‘상고법원 추진’ 梁대법원장 승부수

대법원이 상고법원 법안 발의를 앞두고 대법관 ‘사심심(1-2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에 대해 그동안 사법부 언방에 제기했던 다양한 방안이 대부분 포함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고법원 도입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발표한 △단독재판장 부정판사급 배치 △전문심판관 제도, 특검제 도입 △한국형 디스카버리(불안 전 증거조사절차) 제도 도입 △위자료 기준 공개 방안 등은 그동안 제안에 법조계와 법원·검찰 구성원들 사이에서 1-2심 강화를 위해 꾸준히 제안됐던 안들이다. 특히 단독재판 부정판사급 배치 방안의 경우, 지난 2010년 PD수첩 사건 등 주요 명예훼손 사건 판결 이후 개헌으로 강력하게 제기돼 왔었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단독재판장 재판장으로서 15년 이상 부정판사를 배제하기로 해, 현재 5~9년인 단독판사의 경력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부정판사 출신 변호

사는 “1심부터 경험 많은 재판장이 다변화될수록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의사, 건축사 등 비법관 전문가들 원문심리관으로 배치해 소송 심리에 참여시키고, 한국형 디스카버리 제도 도입으로 사실 증거 수집 능력을 강화할 것도 획기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한 재야 변호사는 “그동안 사법부가 전문 법관에 의한 재판,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입증 책임을 상당히 강조해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개신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의 투명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법관마다 일정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위자료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투명성 증진 방안으로는 양형 심리의 충실화, 소송비용 산입 변화사 보수 현실화 등도 포함시켰다. 대법원은 오는 4월 전권법원장회의에서 사심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논의하고, 향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기자 haaskim@

조선일보 1면 사회

“대법 부당 내내 충실한 심리 가능”
“국민 최종 판단 위임 안 받아 위한 재판받을 권리 위해 빨리 설치될”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찬반이 갈라져 있다. 찬자들은 상고법원 도입이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자들은 상고법원 도입이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이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자들은 상고법원 도입이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법원장인 양승태는 “상고법원 도입이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자들은 상고법원 도입이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이후 상고법원 관련 주요 기사

단계	긍정적 기사(기획기사 등)	부정적 기사(반론 등)
법률안 발의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12.9. 내일신문 “국회, 상고법원 제안에 반대해야”(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단계 - 노출기 (2014. 12. 19. 법률안 발의 ~ 2015. 2. 23. 법률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 조선일보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이○○ 전 대한변협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 한겨레신문 “상고법원, 대법의 하청법원 될 수도”(이○○ 기자) 1.14. 중앙일보 “하○○, 상고법원도입 반대” 1.29. 경향신문 “상고법원보다는 대법관 수를 늘리자”(소○○ 국회도서관조사관 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7. 동아일보 “대법, 더 나은 사법 서비스 제공위해 상고법원 도입돼야” 	
2단계 - 랜딩기 (2015. 2. 23. 법률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 2015. 4. 20. 법사위 공청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6. 법률신문 사설 “상고법원 논의에 돌파구는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23. 내일신문 “상고법원 도입, 국가가 책임감 가져야”(김○○ 전 서울변회 기획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4.2. 경향신문 “국민을 위한 상고법원”(김○○ 고려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6. 법률신문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법리적 쟁점 검토”(이○○ 변호사) 	



단계	긍정적 기사(기획기사 등)	부정적 기사(반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3. 조선일보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 (오○○ 울산대 총장) ▪ 4.14. 한국경제 "범칙금 6만원도 불복...대법 상고심 작년 3만 8천건"(양○○ 기자) ▪ 4.14. 한국일보 "범칙금까지 상고...사건 넘치는 대법 어쩌나"(김○○ 기자) ▪ 4.15. 동아일보 "대법관 증원보다 상고법원 설치가 답이다" (이○○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7. 한국일보 "법학자 74%가 상고법원 신설 반대"(장○○ 기자)
<p>3단계 - 확산기 (2015. 4. 20. 법사위 공청회 개최 ~ 법사위 1소위 안건 상정 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8. 조선일보 "대법원에 年3만7000건... 기다리기 지친다, 줄속재판도 싫다" (최○○ 기자) ▪ 5.28. 동아일보 "상고심 전담 법원 도입 찬성 64%" (조○○ 기자) ▪ 5.28. 법률신문 사설 "상고심 제도 개선 위한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 6.1. 조선일보 "상고심 개편 이젠 결론 내자" (최○○ 디지털뉴스본부 차장) ▪ 6.1. 한국일보 "대법 사건 적체 해소하고 국민 권리구제에 충실한 대안"(손○○ 기자) ▪ 6.1. 법률신문 "미국 연방대법원 개혁이 우리 상고법원 신설 논의에 시사하는 점" (윤○○ 서울남부지방법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9. 경향신문 "상고법원제, 올바른 대법원 개혁 아니다"(이○○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5.12. 한겨레신문 "대법관 증원, 진지한 검토를"(민○○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 5.20. 내일신문 "상고법원제 법안의 위험성"(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5.20. 한국일보 "상고법원은 답이 아니다"(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단계	긍정적 기사(기획기사 등)	부정적 기사(반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5. 헤럴드경제 "상고법원 찬성 법조계 확산...덩달아 사시존치론도 탄력" (함○○, 김○○ 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6. 한겨레 "[왜냐면] 대법관 증원은 해당 아니다" (송○○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8. 매일경제 "대법 지난해 9500건 상고 이유 안된다 기각" (이○○ 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8. ①매일경제 "대법관 1인당 年 3천건 대기 중...3년 넘기는 상고심 수두룩"(이○○, 김○○ 기자), ②"소송법원 도입, 경제효과 최대 70조", ③"상고사건 상당수가 단순한 벌금 사건 혈세낭비"(김○○ 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8. ①법률신문 "상고법관 추천위 구성...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 필요", ②"순회재판 도입... 상고법원 판사 경력도 상향조정" (홍○○ 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3. 동아일보 "전관예우와 상고법원" (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 법률신문 "상고법원 도입 시 최대 69조원 경제성장 효과" (이○○ 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7.2. 동아일보 "상고법원제 위헌 아니다" (조○○ 기자) 	

나. 방송

■ [1단계] 노출期 (2014. 12. 19. 법률안 발의 ~ 2015. 2. 23. 법률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 대법원장님 신년사로 화두 제시

▶ [YTN] 상고법원 설치 올해 현실화되나?(1. 4.)

■ 상고법원 추진 관련 방송

▶ [연합뉴스TV] 대한변협, 변호사 51%, 상고법원보다 대법관 증원 선호(1. 5.)

▶ [YTN] 올해 안 상고법원 설치 물건너 가나(2. 20.)

막말 댓글 판사, 사채왕 뇌물 수수, 판사의 대학후배 성추행 등 사건 잇따라 발생하여 추진 동력 떨어질 것을 언급

■ [2단계] 랜딩期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후 ~ 2015. 4. 20. 법사위



공청회 개최)

▶[연합뉴스TV]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 개최 관련 방송(4. 20.)

■ [3단계] 확산期 (법사위 공청회 후 ~ 2015. 7. 초)

▶[JTBC 썰전 위클리 어워드] 상고법원에 대한 장단점 소개(5. 7.)

- 강○○ “판결이 늦는 건 판결을 거부한 것과 같다(찬성)”

- 이○○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반대)”

▶[KBS, 연합뉴스, MBN, YTN] 서울변호사회 상고법원 찬성, 변협과 이견(5. 18.)

▶[KBS, SBS, MBC, MBN, 연합뉴스, YTN, OBS] 상고법원 찬반 놓고 변호사 단체들 대립(5. 19.)

▶[연합뉴스TV] 상고법원 논의 1년, 변호사 업계 찬성론 고개(6. 15.)

▶[연합뉴스TV] 대법원 한해 재판 4만 건...상고법원 해법?(6. 27.)

▶[연합뉴스TV] 하반기 법조계 이슈는?...상고법원 설치 등 쟁점(7. 2.)

다. 그 외 상고법원 광고 및 이미지 홍보 등

1) 상고법원 광고

■ 상고법원 핸드북 제작·배포(2014. 11.)

- 국회, 전국법원, 기자 등에 배포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

■ 네이버, 다음카카오 브랜드검색 광고

- 2015. 3. 4.부터 현재까지 계속 집행 중

■ 일간신문 광고(4. 27.)

- 40대 구독율 높은 매일경제(발간부수 77만부) 전면 광고 집행
- 광고소재 ⇨ ‘바를 正’ 자 활용한 캘리그래픽 홍보 포스터

2) 이미지 홍보 등

■ [1차 포스터 게시] ‘바를 正’ 자 활용한 캘리그래픽 홍보 포스터

- [게시 장소] ①각급 법원, ② 각급 법원 인근 3km 이내의 지하철, KTX 역사 게시판(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체

역사에 게시) ⇨ 전국 43개 지하철역에 부착

- [게시 기간] 지하철역사 게시는 5. 18.부터 동시게재 시작, 게시 기간은 역사별로 상이(최소 1주일부터 연중 상시 노출까지)

▣ [1차 홍보 동영상(상고법원의 새로운 시작) 제작·유포]

- 지하철 행선 안내기 및 객차 내 모니터를 통해 송출 (6. 1.~ 6. 30.)
집행 노선 : 서울 지하철 1, 3, 4호선 50개 역사 및 2호선 객차 내 모니터



-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에 홍보 동영상 탑재

▣ 종합적 뉴미디어 홍보 플랜 가동

- 2015. 5. 20.경 상고법원 뉴미디어 홍보팀 구성·운영 ⇨ 온라인 등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한 시각적·입체적 홍보 강화를 위해 2차 홍보 플랜 추진

일반 대중의 상고법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쉽고 감성적이며 흥미 위주의 홍보 소재, 방법 고안

개방화된 온라인 Tool과 쌍방향 미디어 플랫폼 활용 방안 모색

- 상고법원 홍보 웹툰 제작·게시 (2015. 7. 1.)

웹툰 유명작가 ‘김○○’ 와 협업으로, ‘대법원과 함께 하는 상고법원 이야기’ 웹툰 제작 ⇨ 12회 연재의 ‘생활툰’ 방식으로 상고법원 제도 설명과 아울러 대법관님·재판연구원·법관들의 바쁜 일상, 재판 관련 에피소드 등을 모티브로 자연스럽게 그려낼 예정



웹툰 1회분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에 게재

재미있으면서도, 상고법원 제도 필요성 등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라는 평

다른 홍보 소재에 비해 높은 조회 수 기록 중 ⇨ 게시 1주일 만에 ①대법원 페이스북 노출횟수 11,784회, 클릭 수 1,874회, 좋아요 수 148회(평균 게시물 1건당 좋아요 수 40~50회), ②대법원 트위터 노출횟수 5,564회, 리트윗 수 20회(평균 게시물 1건당 리트윗 수 5~10회), ③대법원 블로그 조회 수 800회 이상

향후 약 10일 간격으로 후속 웹툰 제작(웹툰 2회분 7. 20. 게재 예정) ⇨ 지하철 행선기, SNS, 인터넷 포털 등 노출범위 및 전파력 높은 플랫폼에 탑재

- 흥미유발형 2차 홍보 동영상, 포스터 제작 중

압축된 메시지 전달하고, 단순·간결·세련된 이미지 표출하는 데 주안점

2. 홍보 활동 분석

가. 언론보도 분석

- 1단계 노출期 (2014. 12. 19. 법률안 발의 ~ 2015. 2. 23. 법률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 [성과] 상고법원에 대한 최초 정보 제공 및 인식의 단초 형성
- [시행착오] ①법률안 발의 직후 전방위 홍보에 착수하지 못한 사이, BH·법무부·민변發 반대 기고문 등 게재 ⇨ 국회 법사위 국회의원, 전문위원 등에게 유입되어 부정적 기류 확산, ②최○○ 판사 등 법관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여론 분위기 위축되었을 때, 위기 대응 대처에 급급한 나머지 상고법원 홍보 전략 부재
- [여론의 전반적 반응] 새로운 제도 도입 공표되었으나, 생경하고 충



분한 정보 부족

- [반대 세력] ①학계(임○○ 교수 등), 대한변협(하○○ 회장)의 위헌론, 4심제 등 법리적 문제점 제기, ②국회의원 로비 입법 지적
- 2단계 랜딩期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후 ~ 2015. 4. 20. 법사위 공청회 개최)
- [특징] 상고법원의 필요성에 대한 동아일보 등 보도 이후, 도입 찬성과 반론의 과정이 반복
법리공방(위헌론, 4심제) ⇨ 2015. 4.부터는 법리논쟁에서 탈피 ⇨ 2년 이상 계류된 상고사건의 수와 범칙금 6만원도 상고하는 현실 등 상고심의 현실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기사 게재
 - [가장 효과를 거둔 보도] ①동아일보 2. 27.자 “대법 더 나은 사법서비스 제공 위해 상고법원 도입해야”, ②한국경제, 한국일보 4. 14.자 범칙금까지 상고하는 현실 소개 기사
 - [성과] ①동아일보 2. 27.자 기획기사를 필두로 여러 언론을 통해 상고법원 도입 논의에 대한 불씨 점화, ②상고법원의 필요성에 대한 각종 기획기사, 기고 등을 통한 인식 형성 ⇨ 법사위 공청회가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짐
 - [시행착오] 언론기고, 기획기사에 집중한 나머지 상고법원 도입 논의가 사법부만의 담론이라는 평가 초래
 - [여론의 전반적 반응] ①여전히 일반 대중의 무관심, ②일부 전문가 계층의 상고법원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 확산
 - [반대 세력] 기존 대한변협 설문결과에 덧붙여 경실련 법학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경실련 주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상고법원 반대 여론이 팽배하다고 주장
- 3단계 확산期 (법사위 공청회 후 ~ 2015. 7. 초)
- 법사위 공청회 직후, 다시 반대 세력의 기고문 활발한 게재 및 변호



사단체의 조직적 반대여론 확산 시도

- But, 5. 18. 서울변회 상고법원 지지 천명 이후, 5. 28.자 조선일보 1면, 동아일보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분위기 반전
- 지역 변협간 찬성, 반대 입장이 대립교차 발표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고법원의 노출이 많아지고, 언론사의 관심도 증대됨
판사들이 상고법원 지지 전화하였다는 대한변협 성명과 그에 따른 비판적 보도는 우호적 여론 확산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언론의 집중보도로 노이즈 마케팅 효과도** 함께 발생
- ①대구, 인천, 제주 지역변호사단체의 연이은 찬성 성명, ②법사위원들의 찬성 입장이 다수라는 설문결과(뉴시스, 매경), ③동아일보 국민 상대 여론조사 발표 이후, 반대 여론이 다소 잦아드는 현상 발생 (2015. 6. 이후)
- 매경의 6. 18.자 상고법원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기사는 다소 그 분석 보고서에 무리가 있다는 반응도 있었으나, 상고법원 도입 분위기 고조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 미침
- [가장 효과를 거둔 보도] ①5. 28.자 조선일보 1면, 같은 날 동아일보 기획기사, ②매일경제 1면 6. 18.자 경제적 효과 특집 기사
- [성과] 상고법원 입법 통과가 가시화되었다는 우호적 분위기 조성
- [시행착오] 특정 메이저 언론의 기획기사에 대한 반발로, 일부 마이너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서 **상고법원 비판 기사를 작성하고자 하는 동기** 조성됨

예컨대, 7. 8.자 국민일보 특집 『상고법원 논의 1년, 문제 없나』 기사 ↵ 조선, 동아, 매일경제에 기사 집중된 데 대한 불만과 동아일보 국민 상대 상고법원 찬·반 여론조사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 비롯

▣ 매체 종합 분석

- 조선, 동아, 중앙, 매경, 한경, 법률신문이 상고법원의 필요성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와 기고문을 주로 게재

- 경향, 한국, 한겨레, 내일신문의 경우 상고법원 반대론자의 기고글을 다수 게재하였으나,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경우에는 찬반 주장을 균형있게 기술하거나 상고법원에 우호적인 기사도 다수 발견됨

나. 그 외 홍보 활동 분석

■ 브랜드검색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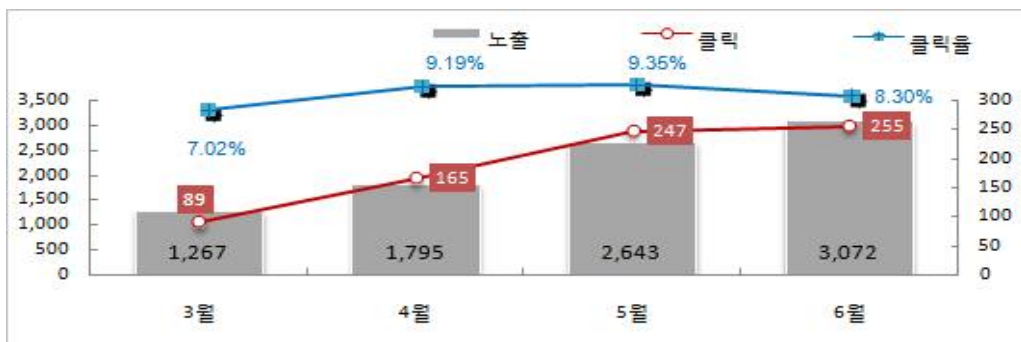
- 노출률 등 (2. 2. ~ 6. 28.)

[네이버] 노출 1,333,363회, 클릭 5,507회, 클릭율 0.41%

[다음] 노출 729,017회, 클릭 5,601회, 클릭율 0.77%

[합계] 노출 2,062,380회, 클릭 11,108, 클릭율 0.54%

월별추이(합계)



■ 지하철 행선 안내기 및 객차 내 모니터 광고

- 지하철 광고 예상 노출률

지하철 이용객수 1일 평균 1,000만 명 이상, 그중에서도 지하철 1~4호선은 전체 이용객의 절반이 넘는 600만 명 이상 이용

호선	1일 승하차 인원수(%)
1호선	584,092명(5.0%)
2호선	3,072,006명(26.3%)



3호선	1,042,055명(8.9%)
4호선	1,231,235명(10.5%)

지하철 영상광고 매체 평균 시청률은 16% 수준으로 지하철 1~4호선에서 1일 평균 96만 여명의 승객에게 노출된 것으로 예상

■ SNS 광고

● 상고법원 SNS 광고(5. 4. ~ 5. 11.) 성과

매체	게시물 노출 횟수 ¹⁾	영상 조회 수 ²⁾
페이스북	3,669,240(광고전 2,400)	11,312(광고전1,312)
트위터	828,770(광고전 6,230)	2,799(광고전 12)
유튜브	205,270(광고전 301)	27,753(광고전 301)
총계	4,703,280	41,864

총 8일 간 광고집행 후 게시물 노출 및 조회 수 급증

● 상고법원 홍보동영상 SNS 홍보 성과(2015. 7. 2. 기준)

[페이스북] 조회수 212,100회(4. 2. 게재)

[트위터] 노출수 835,170회, 리트윗 313회, 관심글 244회

[유튜브] 조회수 30,859회(4. 1. 게재)

다. 하반기 홍보 활동을 위한 착안점 등

■ 언론보도 관련

● ① 상고법원 도입의 **실제적 필요성, 기대효과**를 강조한 기사 효과적

“범칙금 6만원까지 상고, 대법원 상고 연3만 7천건, 사건 적체 해소..기 다리다 지친다” 등 **상고법원 도입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한 기사가 주목 받음

1) 영상을 게시한 게시물 자체가 노출되는 횟수를 의미함
2) 실제로 영상이 재생된 횟수(매체에 따라 자동/수동 재생)



법리논쟁보다 상고법원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기사 방향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②객관적 지표 제시 필요 ⇨ “**긍정적인 지표가 긍정적인 보도를 낳고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

상고법원에 대한 국민의 찬반 설문조사결과, 상고법원 설치 이후의 효과를 부각시킬 수 있는 통계 분석자료, 연구용역결과, 학술자료 등 객관적 지표 변화 추이를 알려 설득력 높이는 방향 모색 ⇨ **상고법원 국민 여론 조사결과 등 추가적인 콘텐츠 개발 필요**

- ③구독률이 높거나 영향력이 큰 언론매체에 적극적인 홍보 필요

조선, 동아 등 메이저 언론의 긍정적 기사가 가져온 긍정적 반향 매우 큼 반면, 충청투데이 4. 19.자 상고법원에 대한 지상좌담회가 보도된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음

다만, 구독률이 조선, 동아, 중앙에 비해 높지 않은 중위 언론사(세계, 국민, 한국 등)에 게재된 기사라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기사 검색을 주로 하는 20 ~ 50대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음

- ④진보 언론에 대한 컨트롤 필요

경향, 한겨레 등의 진보 계층에 대한 여론 조성 기능에도 세심한 주의 기울여야 함 ⇨ 상고법원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기사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어적 홍보활동 병행 필요

■ 기타 홍보 활동 관련

- ①여러 다양한 홍보 소재 활용한 집중력 있는 홍보 추진

예컨대, 상고법원 홍보포스터를 보고 이어 지하철역 행선기에서 상고법원 동영상 본 경우, 반복노출에 따른 인지도 및 각인효과 상승 ⇨ 이후 상고법원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 관심을 가지고 정독, 숙지할 가능성 높음
웹툰, 동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입체적·시각적 홍보물 활용 필요

기존 홍보 콘텐츠의 재가공, 새로운 홍보 콘텐츠의 제작·유포로 상고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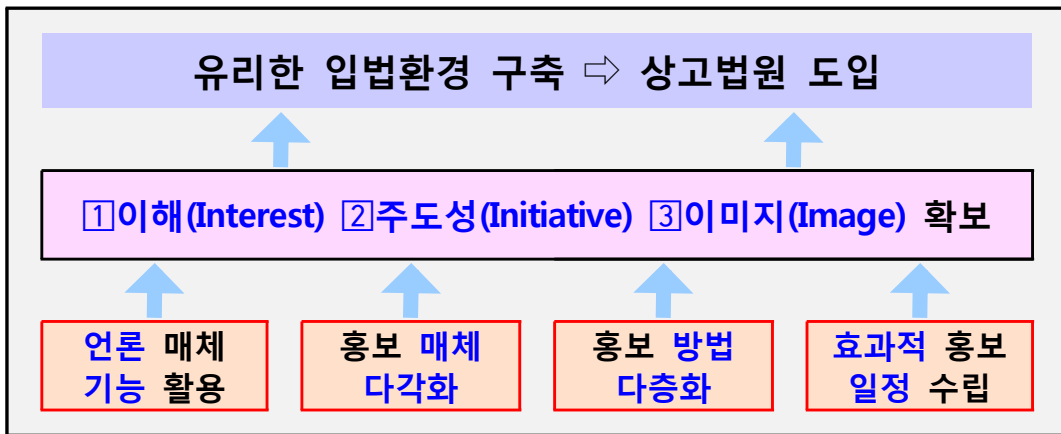
원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 제고 노력 지속 필요

● **②전과 기능 강한 인터넷, SNS 채널 통한 홍보 진작**

인터넷, SNS 홍보는 짧은 시간에 높은 노출 수를 기록하여, 광범위한 홍보 효과 거둘 수 있음 ⇨ 이하의 바이럴 마케팅 전략 등 모색

아울러, 사법부 내부 홍보 강화를 통해,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활용한 홍보 파급력 확대 추진

Ⅲ. 하반기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홍보 방안



1. 하반기 홍보 활동의 기본 방향, 목표 및 타깃, 일정 재점검

■ 기본 방향

- ①하반기 법률안 심사 일정에 조용한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
- ②올해 내 반드시 상고법원 도입하여야 한다는 '필연성', 늦어질 경우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위기감' 조성하는 홍보 전략 모색
- ③홍보 활동의 선택과 집중 ⇨ 홍보 활동의 전체적 프레임과 일정은 조율하되, 전반적인 홍보 강도와 수위가 다운되지 않도록 유의

■ 주안점

- ①상고법원 도입의 불가피성을 주입시키고 상고법원 반대론에 대응할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 확보



- ②인지도 · 설득력 ·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방법론 모색
- ③상고법원 홍보에 대한 피로감을 불식하고, 우회적으로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 정당성 등을 어필할 수 있는 Sub 홍보 소재 개발
예컨대, 사실심 충실화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홍보
- [목표] 홍보활동 [4단계-상고법원 대세期] 구축 ⇨ 하반기 입법성사
견인
 - ① 입법환경에 우호적 여론 조성
여론 주도층과의 호혜적 관계 형성
일선 법원을 포함한 사법부 전체의 홍보역량 결집 및 홍보 마인드 구축
공공 PR(Public Relations)을 통한 일반 대중과의 정보 소통 ⇨ 상고심 제도개선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한 정당성 확보
 - ②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반대 기류 약화
상고법원 추진의 장애 및 위험요인 예방·완화·해소
[對보수층] 법무부 등 막후 견제 세력의 방해 책동에 대한 방어
[對진보층] 민변 등 격렬한 반대 세력의 거친 목소리 잠재우기
- [타깃] 직접적-일반국민, 간접적-국회의원
 - [직접적 타깃] 일반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대중의 관심 유인
 - ①전통 매체에 의한 보도, ②인터넷 등 활용한 대국민 직접 소통 병행
전문가 등 여론 주도층 설득 ⇨ 우군 확보
견제·반대 세력과의 갈등 국면에서 필요한 지지자 획득 ⇨ 상고법원 지원의 寶庫(Reservoir of support) 구축
 - [간접적 타깃] 국회의원



일반 국민, 여론 주도층의 찬동 분위기가 국회의원들에게 유입되도록 함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향배와 유권자인 국민의 반응에 매우 민감
여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응 속도와 방향에 따라 실효적인 대국회 설득 전략 구축 등 선순환 효과 도모

■ 방법

● ① 홍보 매체의 효과적 활용 방안 모색

신문/방송/뉴미디어, 보수/진보, 일간지/법률전문지 등 카테고리별 홍보 플랫폼의 성향별 적합한 활용 방안 수립

신문, 방송 등 전통적 매체 활용 지속 및 우군화

텍스트 메시지 중심의 논증적 홍보 지속

상반기에 다소 부족했던 지상파 방송을 통한 노출 추진

개별 언론사별 호혜적 관계 형성·유지 방법 모색

개방화된 온라인 Tool과 쌍방향 미디어 플랫폼 활용 방안 모색 ⇨ 홍보 매체 다층화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를 통한 상고법원 이슈화

● ② 신선한 홍보 콘텐츠 발굴

대중에 대한 인지도·호감과 전문성을 갖춘 홍보源 발굴 ⇨ 언론사 성향에 맞게 매칭하여 시너지 효과 도모

국민들에게 올해 꼭 통과시켜야 할 법률안으로 확신·각인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홍보 소재 개발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감성적이며 이미지 강조하는 홍보 소재 제작

■ 일정

- ①하반기, 길게는 12월까지 여론의 불씨가 소진되지 않도록 장기적,



산발적 홍보 일정 마련하되, 집중공략시기 설정

- ②7, 8월 하반기 초기에 사실심 충실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로 상고법원에 대한 식상감 해소하고 사법부에 대한 다각화된 긍정적 이미지 구현

2. 상고법원 대국민 홍보 방안

가. 입법추진 환경 개요

▣ 대외 기관 상황

- [국회] ①언론의 우호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부정적 의견 강도 약화, ②그러나 여전히 BH·법무부·민변의 영향 아래 있는 일부 의원들의 견제·반대 기조 유지되고 있는 상황
- [검찰, 법무부] ①전방위적 여론에 대한 부담감 높아짐, ②장관 교체에 따른 변수 발생 가능
- [변호사단체] 긍정적 분위기 확산 ⇨ 반대 단체 출구 전략 모색 중
- [언론] ①상고심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②상고법원 도입 긍정적 기류 확산 ⇨ 한겨레, 경향, 내일 등 난처한 상황

▣ 입법 추진 로드맵

- 입법 최종 목표 시점인 하반기 국회(10월, 11월경) 법률안 심사 돌입 이전에 실효적 홍보를 통해 상고법원 대세론 구축 필요

☑ 상고법원 입법추진 로드맵

- ▶ [7월 임시국회] 7. 16./7. 20. 법사위 1소위 안건 상정 및 충실한 논의
- ▶ [8월 임시국회] 회기: 8. 16.경~8. 31. 예상, 1소위에서의 논의 속개 ⇨ 쟁점에 대한 합의점 등 도출
- ▶ [9월 이후 정기국회] ①9월 추석연휴 전까지 국정감사 종료 예상, ②예산안 본격 심사 전인 10월, 11월경 법사위 1소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 추진

나. 홍보 방안 수립을 위한 고려 사항 ⇨ 사법부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



획득

▣ 진정성에 대한 주요 지표 제시

- [핵심 지표] 대법관 다양화로 표방할 수 있는 가치의 다양화
-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가 반영된 대법원 판결의 지속적인 선고

▣ '사실심 충실화' 논의 주도

- 사실심 충실화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인식 제거
-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 설명 및 구체화를 위한 의견 수렴
- 사실심 법관에 대한 대법원의 신뢰 메시지 부여
사실심 부실이 항소, 상고의 주된 원인 아니고, 더 충실한 사실심을 위한 제도적 보완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
사실심이 충실하더라도, 늘어난 상고사건 처리를 위한 '법률심 충실화' 대책으로 상고법원 도입이 필요함에 대한 이해 요청

▣ 사법부의 발전을 위한 큰 그림 보여주기 ⇨ 상고법원은 '일부'에 불과

- 외부적으로는 법안 처리 및 통과를 위한 명분 부여
- 내부적으로는 '대법원을 위한 제도'가 아님을 설명

▣ 핵심으로 인식되는 부분의 선제적 희생 의지 천명

- 사법부 독립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외부 비판 적극 수용
- 상고법관 임명에 대한 대법원장의 인사권 내려놓기, 원로 법관 제도 (Senior Judge) 도입을 통한 전관예우 해결, 대법관 감축 등

▣ 진정성에 대한 신뢰 획득 ⇨ 상고법원 도입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



- ①대법원의 여러 노력이 진정성이 있고 믿을 만하다
- ②그래서 상고법원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말에 믿음이 생긴다
- ③자기희생까지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제도를 막는 것은 좀 그렇다
- ④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믿어보자

다. 신문을 통한 홍보 방안

1) 기사 아이템

■ ①대안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법사위원 전수조사**

종전의 찬반 성향 분석 기사에서 진일보한, 구체적 대안 관련 개별 법사위원들의 의견 수렴하여 기사화

상고법원 도입을 기정사실화하여 공론화시키는 홍보 효과 가능

하반기 입법 성사를 위한, 개별 법사위원별 설득 논리 구축에도 기여

■ ②**상고심 소송물 가액, 소송당사자 숫자 등 객관적 수치 자료 제시**

상고심 소송물 가액의 자본시장 평균 수익률 계산하여, 6개월이나 1년 늦어질 경우 경제적 손실 수치화

상고심 당사자 12만명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 ⇨ 신속한 일상 복귀 필요

■ ③**인터뷰, 제언, 지상토론 등**

● 상고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각계 전문가 10인의 제언**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 등 분야별 10인씩 선정 ⇨ 상고법원에 대한 사회 주도층 인사들의 다양한 시각 제시

● **긴즈버그 대법관 인터뷰** 등 (8. 3. ~ 8. 7. 방한 예정)

방한 기간 중, ①**인터뷰**, ②**좌담회**(김○○ 대법관 등 참여) 등 개최

[인터뷰 등 주제] “전원합의와 구두변론”, “상고허가제의 의미와 대법원의 역할” 등



● 상고법원 운영 방안에 대한 **미국 판사들의 제언**

미연방 판사 ○ ○(고려대 강의 활용), 뉴욕 주 판사 ○ ○ ○(연세대 강의 활용)

[인터뷰 주제] ‘미국의 상고허가제 : 대법원이 심판해야 할 사건은?’

● **前대법관 인터뷰**

조○○, 김○○, 김○○, 박○○, 전○○ 등

대한민국 법원의 날(9. 13.) 전후 등 적절한 시기 채택

● **대안 구체화** ⇨ 각 대안별 의견 수렴(지면 토론, 인터뷰 등)

법학교수 5인의 찬반 의견 등 ‘대안에 대한 토론 붙이기’

■ **4중양지 기고문**

● 15개 중양지 7월~10까지 1회씩 기고 목표 ⇨ 1주당 1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해럴드경제	서울	서울경제	국민	세계	한국	한국경제	내일	동아	경향	문화	매일경제	한겨레	중앙	조선

■ **5기타 아이템**

- ▶ 12월 발의 ~ 6월 임시회 논의 종합 기사
- ▶ 지상 좌담회, 논설위원 칼럼 등
- ▶ 상고법원 설치 후 사건 분류 및 재판 진행 시뮬레이션
- ▶ 제3자 의견서 제출 제도 이슈화
- ▶ 대법원장님 취임 4주년 기념 관훈 토론회 등
- ▶ 대법관 1인 증원 시 비용 : 상고법원 판사 1인 증원 시 비용
- ▶ 상고법원 도입 이후 하급심 판사의 경력 변화 거의 없음
- ▶ 일본, 독일 등 상고허가제 실시 국가에서 당사자 및 변호사의 상고심 재판 기회에 대한 기대감(상고심 기회의 불충분 보장에 대한 불만)

2) 언론사 효과적 활용



▣ 법조출입기자설명회 개최 ⇨ 전체 기자단과의 소통 및 정보 공유

- 법조출입기자단 대상 질의, 응답을 통해 상고법원에 대한 이해 심층화
- 일부 언론사 기자단과의 물밑 접촉 등을 통해 기사거리 제공한다는 불만 등 누그러뜨림
- 다만, 대안 구체화 및 사실심 충실화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실시

▣ 주요 메이저 언론과의 호혜적 관계 유지

- 조선, 동아일보의 우호적 분위기 기반으로 반향 불러일으킬 후속 기사 게재 추진 ⇨ 관심 가질만한 새로운 홍보 소재 및 방법 제안
예컨대, 조선일보 주도 대국민설문조사, 특집 좌담회 등
- 메이저 언론 중 상대적으로 소외감 느끼는 중앙일보에 대한 유화책 고안
상고법원 도입이 가져 올 긍정적 변화 시뮬레이션, 객관적 수치화된 기사 아이템 등 제시
- 메이저 언론의 지속적인 긍정적 기사로, '국민 다수가 원하는 상고법원' 이미지 구축

▣ 중소 언론의 찬성 입장 합류 및 일탈적 반대 기사 방지

- 메이저 언론을 견제하면서도 그 영향력에 대한 학습 효과 인지하고 있는 중소 언론의 성향 이용 ⇨ 상고법원 찬성이 대세라는 분위기 형성
- 상대적 박탈감, 주목받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돌출적 반대 기사 억제 필요

▣ 진보 언론의 악의적 반대 공론화 시도 억지

- 민변 등 외부세력과 언론사 상충부 사이의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



교감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사화 분위기 사전 감지, 대응 기사를 통한 조기 진화 등 즉응 태세 확립 ⇨ 공보관실과 법조출입기자단간 상시 유대관계 공고화 등 필요

라. 방송을 통한 홍보방안

1) 라디오

■ 시사 프로그램 종류

- 아침프로

MBC 신○○의 시선집중(매일 아침 7시~9시)

KBS 안녕하세요 홍○○입니다(매일 아침 06:25~06:56 / 07:15~07:55)

CBS 박○○의 뉴스쇼(월~금 07:30~09:00 / 토 07:15~09:00)

TBS 고○○의 열린 아침(매일 아침 7시~9시)

- 저녁프로

CBS 시사자키 정○○입니다(월~토 18:00~20:00) : 집중 인터뷰(15~30분)

KBS 공감토론(노○○ 교수, 월~금 19:20~20:56) : 3~4명 패널 초대

■ 방송 목표

- 월 1회 라디오 방송 노출 목표
- 시사쟁점에 대한 집중 보도 + 인터뷰 형식 + 토론 형식 ⇨ 모두 추진
- 적절한 인터뷰 대상자 섭외 필요

[TBS 고○○] 서울변회 회장 추진 중

2) 지상파

■ 프로그램 종류



- ①메인 뉴스 속 심층보도

MBC 뉴스플러스 형식, 뉴스 속 심층보도 코너 섭외

- ②뉴스 스튜디오 대담

KBS 밤 11시 뉴스라인 - 이슈&토크 : 전문가 설명과 분석(5-6분)

SBS 밤 12시 35분 나이트라인 - 배○○의 0시의 인터뷰 : 전문가 초대 인터뷰(3-4분)

- ③심층보도

KBS 취재파일 K(금 22:50) / MBC 시사매거진 2580(화 22:00)

- ④토론

MBC 100분 토론(화 24:20-01:40) / KBS 생방송 심야토론(금 23:40-01:00)

- ⑤좌담

KBS 시사진단 / KBS 일요진단 /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 방송 목표

- ①은 7-8월, ②는 10월경 집중 추진

- ③, ④, ⑤는 각 프로그램 장, 단점 검토 필요 ⇨ 방송국별 1개씩 9-10월경 추진

3) 종편

■ JTBC, 채널A, TV조선 중심

- JTBC 뉴스룸, 채널A 왜도난마, TV 조선 장○○의 시사토크, 시사토크 판 등 주요 시사 프로그램 보도 추진

- 방송국 섭외 + 주요 출연진에 대한 설득 병행 필요

성명	경력 등	주요 출연 채널	비고
김○○	변호사	TV 조선, JTBC, 채널 A, YTN, MBN 등	
여○○	변호사	TV 조선, JTBC, 채널 A, YTN, MBN 등	



정○○	변호사	TV 조선, JTBC, YTN, MBN 등	
양○○	변호사	TV 조선, JTBC, MBN 등	여성
백○○	변호사	TV 조선, YTN, MBN 등	
장○○	변호사, 참여연대	JTBC, MBN 등	
양○○	변호사	YTN, MBN 등	
손○○	변호사, 진보성향	TV 조선, 채널A, YTN	
김○○	변호사, 검찰출신	JTBC, YTN, MBN 등	
박○○	변호사	채널 A, YTN, MBN 등	
최○○	변호사, 대한변협 대변인	TV 조선, YTN, MBN 등	
그 외 강○○, 전○○, 강○○ 변호사 등			

마. 학술지, 토론회 등

1) 논문 발간

- 경제적 효과(허○○ 교수)
- 헌법 쟁점 정책연구용역(김○○ 교수)
- 상고법원안 설명 및 대안 소개(강○○ 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

2) 세미나 등

- 공동 학술 세미나(민소법-형사법-공법) 또는 학회별 토론회
 - 주제 : “상고법원 + 하급심 강화”
 - 형식 : 법사위 위원장 주최 정책토론회 형식 고려

바. 뉴미디어 홍보 방안

■ 웹툰, 옴니버스식 만화책 제작·유포

- [홍보 필요성] ① 웹툰이나 만화책은 어렵고 무거운 내용이라도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매력 있음, ② 상고법원에 대한 홍보가 국민 시각에서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으므로, 웹툰 등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 있음, ③ 또한, 웹툰은 손쉽게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



카오톡 등)를 통하여 제3자에게 이를 용이하게 전달·전파할 수 있음

- **[홍보 현황]** 현재 전문 웹툰 작가(김○○)와의 협업을 통해 웹툰 1회차 제작 완료하여, 6월 말에 대법원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상태 ⇨ 알기 쉽고 흥미로운 소재 활용하여 친숙하고 편안한 전달력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른 홍보 콘텐츠에 비해 높은 조회 수 기록 중
- **12회 생활툰 연재 방식으로 제작 계획** ⇨ 7월 중 각급 법원 홈페이지, 지하철 행선기 등에 업로드하고, 네이버 웹툰 게시판 등 인터넷 포털에도 노출시키는 방안 검토 중
- 아울러, 상고법원, 사실심충실화, 법관의 일상, 재판 관련 에피소드 등을 소재로 한 유니버스식 만화책 제작·발간 ⇨ 각급 법원 종합 민원실, 도서관 등에 비치하여 외부 방문객이나 내부 구성원들이 탐독할 수 있도록 제공

▣ 인터넷의 전파 기능을 극대화하는 **바이럴(Viral) 마케팅 전략** 구사

- **[개념]** 상품이나 광고를 본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공유 의식 유발하여 자연스럽게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홍보 마케팅 전략 ≡ 입소문 마케팅
- **[특징]**
 - ①저비용: 기존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보다 **저비용 高효과**
 - ②효율적 홍보: 홍보 타겟을 세분화하여 타겟 특성에 따른 커뮤니티 선정과 맞춤형 홍보 집행
 - ③높은 신뢰도: 홍보 기관이 전하는 메시지는 ‘광고’로, 지인이 전하는 메시지는 ‘정보’로 인식
 - ④홍보 지속성: 홍보 집행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홍보 효과 발생
- 상고법원 관련 바이럴 마케팅 전략



①검색엔진 최적화 전략 ⇨ 대법원, 재판, 상고 등 검색율이 높은 연관 키워드와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소스로 활용하여 상고법원이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노출되도록 하고,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으로 노출 빈도와 강도를 유지·관리시키는 전략



②키워드 전략 ⇨ 연관 키워드(대법원, 재판, 상고 등), 시즌 키워드(7월의 제헌절, 9월 대법관 청문회 등), 이슈 키워드(상고제도 개선, 사실심충실화 등), 브랜드 키워드(사법부, 자유, 평등, 정의 등)를 월간 조회수 중심으로 선정하여, 해당 키워드 입력 시, 상고법원이 검색되어 관련 정보 제시되도록 하는 전략

바이럴 마케팅 Keyword 전략

타겟의 관심도가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이버 검색광고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킬링키워드**, **이슈키워드**를 월간 조회수 중심으로 선정하여 키워드 활용

브랜드 키워드
 브랜드 & 브랜드 관련 키워드의 인지도를 월간 조회수로 알아본다.

이슈 키워드
 이슈 키워드를 활용해 SEO 전략으로 콘텐츠 노출 가능성을 높임

시즌 키워드
 활발 시즌에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를 선정

타겟 키워드
 타겟과 관련된 키워드로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조사한다.



사. 그 외 사법부 내부 자원 활용한 대국민 홍보 방안

■ 상고법원 팸플릿 제작·유포

- 각급 법원 소개 리플릿, 전자소송 팸플릿, 국민참여재판 팸플릿 등과 유사한 양식의 상고법원 개요 설명한 2~4면 분량의 팸플릿 제작
- ①각급 법원 종합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법원 방문객들에게 상고법원 제도 안내, ②코트넷, 대법원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게재, ③대한법률구조공단, 시청, 구청 등 지역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얻어 팸플릿 비치하는 방안 추진

■ 각급 법원 종합민원실 등 영상 디스플레이를 통한 홍보

- 각급 법원(지원 포함) 종합민원실, 협의이혼대기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 디스플레이에 상고법원 홍보 동영상, 웹툰 등 탑재하여 송출
- 소송서류 접수, 기타 민원 업무를 위해 법원 방문한 소송 이해관계 인이나 민원인이 대기 중 자연스럽게 상고법원에 대한 인식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

■ '대한민국 법원의 날' 행사와 연계한 홍보

- '대한민국 법원의 날' 홍보 자료 등에 상고법원 웹툰, 포스터 등 게재
- 9. 13. 방영 예정인 KBS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에서 상고법원 관련 문제가 나오도록 추진
-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과 새로운 심급체계의 리모델링을 구현하려는 상고법원 제도의 동반 홍보 ⇨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변화하려는 사법부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

■ 법원 방문하는 일반인, 학생 대상 견학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 각급 법원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법원 견학 프로그램 중 '판사와



의 대화'코너에서 상고법원 제도의 취지, 장점 등 설명

-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그 숫자도 계속 증가 중 ⇨ 이해도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대법원 견학 프로그램의 경우, 행정처 심의관들이 돌아가며 '판사와 대화'코너 진행하고 있음 ⇨ 홍보 효과 거두기 쉬운 **고등학생 이상 견학 프로그램에, 상고법원 업무 관련 심의관을 투입하는 방안 검토**

▣ 사법연수원의 사법교육 직무연수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 [프로그램 현황] 동하계 방학기간 중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사회과 및 생활지도업무 담당 교사 우선) 40여명 대상으로 사법부 소개, 법교육론, 재판절차 안내 등 강좌 개설
- 사법부 소개 또는 재판제도 안내 강좌에서 **상고법원의 취지, 개요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교사들의 상고법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시키는 방안 검토
- 교사들을 홍보 매개체로 한 일선 교육기관 구성원 및 중고등학생 대상 2차 교육 및 홍보 확산 효과 기대

▣ 각급 법원의 국민과의 소통 행사 활용

- 각급 법원에서 실시하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국민과의 소통 행사에서 상고법원에 대한 소개, 홍보 실시**

순번	법원	사업명	시기	행사 개요	홍보 방안
1	춘천지법	춘천법원 라이딩 행사	2015. 7. 11.	법원 가족, 법조출입기자 참여하는 동해안 자전거 라이딩 행사	통일전망대에서 상고법원 플래카드 게시, 상고법원 기원 이벤트 개최
2	서울고법	농촌법률학교	2015. 7.-12.	법관이 농촌지역 방문하여 지역주민에게 법률강의 실시	상고법원 제도 강의 내용에 포함



3	대전고법	대전시립교향악단 초청음악회	2015. 9. 10.	다문화 가정, 장애인, 보육원 아동 등 초청 음악회 행사	행사 도입부에, 상고법원 홍보 동영상 등 상영
4	대구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2015. 12.	일반 시민과 소외 계층 초청하여 음악회 개최	"
5	서울남부지법	야구 데이	2015. 8.	법원가족이 지역주민들과 프로야구 관람	야구장 전광판에 상고법원 동영상 등 송출
6	대구지법	UCC 공모전	2015. 7.-9.	학교폭력, 신종범죄 대책 등에 관한 UCC 공모 및 시상	공모 주제에 상고법원 포함
		EBS 리틀소시움 대한민국 법원의 날 행사	2015. 9.	지역 어린이 직업체험 시설인 EBS 리틀소시움 법원체험관에 대한 지원 및 무료 초청 행사	법원체험관 코너에 상고법원 안내 부분 설치
7	광주지법	토크콘서트	2015. 9.-11.	사회 각계각층을 초청하여 바람직한 사법부의 모습 등에 관한 토크 콘서트 실시	토크 주제로 상고법원 포함시켜 공론화
8	전주지법	법조삼성 토크 콘서트	2015. 9.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하여 KBS와 공동으로 법조삼성 토크 콘서트 프로그램 제작 방송	"
9	창원지법	지역방송국(KNN)과의 공동캠페인	2015. 9.	일반인이 관심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원이 설명하고 해결책 제시하는 영상물 제작, 송출	상고법원 관련 내용 추가

3. 상고법원에 대한 사법부 내부 홍보 방안

가. 최근 내부 상황

- 상고법원에 관한 ①내부소통 노력 및 ②주요 언론의 일련의 우호적 보도로 법원 내부에서 상고법원 법률안 통과에 대한 기대심리 확산·상승기류
- 연초 상당수 일선법관들의 무관심 내지 비관적 전망을 적극적 관심과 낙관적 분위기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둠
- 그러나 ①현재 입법환경상 **법률안 9월 정기회 이전에는 통과 가능**



성 희박하고, ②7월 들어 일부 언론이 상고법원 도입 시도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기도 함 ⇨ 모처럼 조성된 법원 내부의 기대감이 **실망감이나 부정적 분위기로 악화될 우려** 차단필요

- 법원 내부의 일부 부정적 분위기가 대외적으로도 입법 추진동력을 약화시켰던 연초의 상황으로 회귀하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함

☑ **연초 어느 법사위원의 뼈아픈 발언**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모 부장판사가 말하기를, 모든 판사들이 상고법원 설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판사들은 아예 그런 정책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

▣ **내부소통 현황 등 재점검을 통한 소통 지속강화 필요**

- 그간의 내부소통 방안 및 성과 등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반기 입법추진 기간 내내 법원 내부의 결속과 지지를 강화·지속할 방안 필요

나. 내부 인식 현황 및 기존 소통 방안 점검

1) 점검 필요성 및 방법론

▣ **내부 인식 현황 점검 및 성과 분석 ⇨ 하반기 내부소통 방안의 방향 설정**

- 냉정한 인식 현황 점검을 바탕으로 법원 내부의 이해 고취 및 결속력 강화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가시적 방안 모색 필요
- 피상적 내부 소통 및 홍보 이상의, 상고법원에 대한 심층 소개, 법관 개개인의 관심 사항에 대한 직접적·구체적 설명, 반대 입장에 대한 설득 논리 등 구축하여 전파하는 방안 필요

▣ **구체적 점검 방법 및 성과 분석 방향**

- ①다층화, 다각화된 의견 수렴 방안을 통해 법원 구성원의 상고법원 관련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②그간 시행되어 온 코트



넷 상고법원 배너 게시, 각급 법원 법관 워크샵 등 기존 내부 소통
방안에 대하여 성과 분석

- 인식 현황 파악 방법 ⇨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을 중점 대상으로 함

- ① 법관 전용 익명 인터넷 게시판 ⇨ 진솔한 목소리 등 정확한 여론 수렴
- ② 기획법관 등을 통한 현황 및 법관 여론 취합 ⇨ 폭넓은 현황 및 기수·경력 등 고려한 분석가능한 현황 파악 + 질의 사항 등 취합
- ③ 행정처 심의관 등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수집 ⇨ 문제의식에 기반한 현황 파악

- 성과 분석 방법

기존 소통 방안에 대한 법관들의 평가 ⇨ ① **몰입도를 높이는 긍정적 요소**
및 ② **반발감을 초래하는 부정적 요소** 추출

내부 소통의 [1단계 목표]인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제공** 여부 및 [2단계 목표]인 **공감대 형성과 심정적 결속 강화** 목표성취 여부 및 기여도 분석

2) 내부 인식 현황 점검

■ 전반적 인식 현황 개관

- 상반기에 비하여 관심도와 정보 수준 향상

① 주요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 + ② 법원장, 수석부장 등이 티타임, 만찬, 판사회회, 법관 워크샵 등 다양한 자리에서 상고법원 정보 제공

⇨ 관심도의 발현으로 코트넷 상고법원 게시판 중 주요 **언론보도 정리 게시물**의 **조회수가 1,849회**, 주요 **방송보도** 정리 게시물이 **1,359회**, 상고법원 관련 **법안심사 일정 안내** 게시물이 **1,543회**, **공청회 자료집** 게시물이 **820회**에 달함(중복 제외한 순 조회인원수임. 조회수에 일반적이 포함되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수치임)

다만 여전히 **일부 기획법관 조차 ‘솔직히 판사들이 별 관심 없고, 통과 가능성에는 더욱 회의적이다’** 라고 하고 있음 ⇨ 관심도와 지지도가 다



수의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님

- 법관들의 관심은 대부분 인사제도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표명되고 있음 ⇨ 심급제도, 사실심 충실화와의 관계, 사법부 위상 강화 등의 관점에 대하여는 언급 많지 않음

- 상고법원 도입의 불가피성에 대하여는 공감대 확산

무관심하던 판사들의 경우 불가피한 제도라는 점에는 동의하게 됨 ⇨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법관도 생김

처음부터 반대의견을 가졌던 판사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설득되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입장이나, 다만 반대 목소리를 표출하지는 않는 분위기 형성

- 직급별·계층별 관심도 편차 여전히 큼

부장판사 이상 및 대법원 또는 상고법원 연구관 선발 대상 기수 판사들의 상당한 관심도 vs 그 이하, 특히 배석판사들의 낮은 관심도

- 주로 제기되는 반대 의견

▶ 판사들 의견수렴 절차 없이 행정처에서 다 정해놓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 하였다

▶ 상고사건이 많고, 상고심 심리부담이 큰 것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사실인정에 개입하였기 때문**인데, 상고법원 설치되면 상고심 강화한다면서 우수한 자원을 상고법원 판사 또는 재판연구관으로 대거 데려갈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하급심에 대한 불신으로 상고심의 파기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법관 익명 게시판에서 크게 호응을 얻음**)

▶ 높은 분들에게만 좋고, 평판사들에게는 좋은 점 없어 보인다

▶ (특히 단독판사를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승진 대상 보직을 만들면 법관 관료화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

▣ 구체적 인식

▶ 기대감을 갖는 판사들 ⇨ 상반기 **6월 국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언론, 기획법관 등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 주요 언론에서 갑자기 상고법원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보도하는데, **대법원에서 언론과 무슨 딜을 한 것이냐**



- ▶ 상고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사유로 정한 '헌법위반, 판례위반' 등은 주장하기 나름이어서 **결국 어정쩡한 4심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 ▶ 판사회의에서 법원장에게 '사실심 충실화와 상고법원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묻기도 함
- ▶ 상고법원에서 심사할 사건과 대법원에서 심사할 사건의 **구분이 여전히 모호하고 애매하다**
- ▶ 필요성은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통과가 되겠느냐**
- ▶ 직관적으로 수긍이 되는 **대법관 증원론과 상고허가제에 비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 ▶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법원이 상고법원에 올인한다고 계속 쓰는 것이 부담스럽고, 놀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 ▶ 사법행정라인을 중심으로 **상고법원 이야기만 하는 것에 솔직히 반감이 든다**
- ▶ 헌법재판소에 밀리지 않고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단순히 업무량 때문만이라면 이와 같이 올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차라리 법관들에게 현재 등과의 관계에서 **사법부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니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이 공감대를 얻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판사들이 법원 조직 자체에 대한 애정은 있다
- ▶ 대법원장 인사권이 집중되는 것에 비판적인 법관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렇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낼 수 있는 것 아니냐
- ▶ 법률안 발의 당시 각 법원장 및 행정처 간부들이 의원들에게 **사실상 입법청탁을 한 것으로** 보여 불쾌했는데, 지금은 **다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 ▶ 대법원의 **인사권, 통제권 강화, 상고법원의 우수인력 독점 등 사법부 전체로 보아 상층부의 비대화가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문이다**
- ▶ 당장 와 닿지 않는 상고심 개선보다는 변협 및 각 변회의 대립, 순회 재판 제도 도입 아이디어 등이 흥미롭다

■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 확정 可否 ⇨ 아직까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움.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내심으로 모두 찬성한다는 취지로 단정하기 어려움**

● **현 단계에서는 적극 반대 내지 무관심 법관이 크게 감소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어 보임

- 일선 법관들이 상고법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하여는 ①법관 개개인에게 줄 장점, ②(대법원장님 개인이 아닌) 사법부 위상 강화, ③국민에게 누리게 될 장점 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심정적 결속감을 공유함은 물론, 상고법원 **좌절시 사법부 위상추락으로 이어진다는 위기감까지 공유**되어야 할 것임

3) 기존 소통 방안 평가

- ▣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라인을 중심으로 한 정보제공형 소통이 중심을 이룸** ⇨ [1단계 목표 일부 달성] + [2단계 목표 미흡]
- 티타임, 법관 워크숍, 각종 연구회 등 소통 기제는 다양하였으나, 소통 주체 및 방식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됨 ⇨ 새로운 내부 소통축으로서 허브(HUB) 법관 모색할 필요
- 일부 관심도 및 이해도 제고에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선 법관 입장에서 일부 피로도 느껴지고, 가치 공유 및 심정적 결속 강화의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함 ⇨ 정서적 교감 강화 방안 모색할 필요

다. 하반기 내부 소통 강화 방안

1) 추진 목표

- ▣ **① Boom-Up 상태 지속 유지**
 - 언론 및 외부의 상고법원 관심도가 낮아지거나 소강상태가 되더라도 법원 구성원의 관심과 긍정적 분위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
- ▣ **② one voice를 넘어 적극적인 홍보대사 역할 부여**
 - 정보제공을 통한 이해도 제고 및 오해 불식을 바탕으로 ①상고법원이 사법부와 국민에게 줄 장점에 기초한 몰입감과 심정적 결속감은 물론 ②상고법원 좌절시 사법부의 위상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위기감까지



공유하는 방안

- 사법부가 대외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입장을 현출함은 물론, 강화된 심정적 결속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 각자가 홍보대사 역할에 나서도록 할 필요 ⇨ 행정처 독주에 대한 우려 불식은 물론 전방위적 홍보·설득 강화

■ ③ 법원 내부 상향식 추동력 확보 및 일반직 공무원까지 공감대 확산

- 법원행정처로부터 각급 법원으로 내려가는 탑다운(Top Down) 방식의 소통을 넘어 일선 법관들의 관심과 기대가 사법행정라인과 외부로 표출될 수 있는 바텀업(Bottom Up) 형태의 소통으로 진화할 필요
- 법관은 물론 법원공무원까지 상고법원의 대세론 확산에 동참하는 방안

■ ⇨ 입법 추동력 극대화

2) 구체적 소통 방안

■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설득 방향 설정

● 기본원칙

- ① 법관의 계층별·직급별 관심사항과 의문점을 추출하여 그에 대응하는 최적의 맞춤형 정보제공
- ② 인사정책 등 일선 법관들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중심으로 정보제공함으로써 관심 유발
- ③ 언론을 통하여 단편적으로 접한 왜곡된 정보와 피상적인 이해로 인하여 상고법원안에 대한 오해가 누적된 상황 ⇨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명확한 설명 필요



④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사법부 비전에 대한 가치 공유를 통해 일체감과 몰입감 부여 ⇨ 심정적 결속 강화로 법관 개개인의 상고법원 전도사 역할 기대 ⇨ 입법 추동력 극대화

● 계층별·직급별 관심사항 추출

▶ [고법부장 이상의 법관 그룹]

- 상고법원 신설에 따른 상고법원 판사 임명 규모, 대상 범위 및 시기 등
- 상고법원과 대법원의 관계 및 고등법원 형해화 우려
- 상고법원 도입 성부가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

▶ [지법부장 그룹]

-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따른 고법부장 공석 규모 등 인사에 미치는 영향
- 상고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4심제 우려

▶ [단독판사 그룹]

- 상고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및 대상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축소 여부
- 상고법원 설치로 (특히 도입 초기) 상고심이 사실인정에 더욱 적극 개입할 것인지 여부 및 하급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여부
- 상고법원 추진 배경 및 법관 관료화 우려

▶ [배석판사 그룹]

- 상고법원과 일선 법원의 관련성
- 사실심 충실화와 상고법원의 관련성
- 상고법원에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

●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설명 전략①] 지법부장 이상 그룹 ⇨ 비전 공유

① 상고법원 신설에 따른 대법원의 정책법원화 ⇨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 위상 강화**

국가의 법질서를 종국적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와 통합을 주도하여 국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명실상부한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 구축

법치주의 구현, 사회통합, 규범담론 등에 관한 논의의 질과 양의 모든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압도 가능

② 상고법원의 충실한 권리구제기능 및 심리불속행 폐지 ⇨ **국민의 재판받**



을 권리 실질적 보장 + 국민의 만족도 제고로 사법부 전체 위상 강화

법무부 등과의 관계에서도 차별화된 위상 확고히 할 수 있음

③심급체계 전반에 관한 리모델링 정책 ⇨ 사법부 장기 비전

[사실심으로서 1심] 쟁점의 조기 현출, 쟁점 중심의 총실 심리 및 실질적 증거조사
⇨ 원칙적으로 사실심리 종결
[사후심으로서 2심] 심리범위 적정화 ⇨ **장기적으로 항소법원 설립 추진**
[최종심으로서 3심]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 + 상고법원의 권리구제 기능

④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 높다는 긍정적 메시지 전달

6월 임시회에서 입법 무산으로 19대 국회 처리가 어렵다는 우려 해소 필요

-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설명 전략②] 단독판사 이하 그룹 ⇨ **오해 해소를 통한 부정적 선입견 불식 및 구체적 이해관계 설명**

①도입필요성과 배경에 대한 근본적 오해 해소

대법원 사건 부담 경감을 위한 대증적 처방이 아니라 심급구조 전반을 개선하려는 장기적 비전과 최고법원으로서 정책법원 구현을 위한 청사진의 일환임

수뇌부 몇 명의 의견이 아니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제도임

국민을 위한 상고심 개선 방안이고, 사법부 상충부를 위한 방안이 아님

②사실심 관여 및 관료화에 관한 우려 불식

항소심의 사후심化, 상고심의 법률심化를 지향하는 사법부 장기 비전에 비추어 사실심 관여 확대 가능성 없음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의 실질적 추천권 행사 등으로 인사권 내려놓는 방안 추진하고 있어 법관 관료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함

③바람직한 재판 구현 및 법관의 자부심 고취 방안임을 안내

사실심 충실화 방안 등은 **재판의 중심을 사실심에 두려는 정책**으로서 사



실심 법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메시지 표명

대법원의 정책법원化에 따라 퇴임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도 해소될 것임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설명 전략³⁾] 직급별 인사 관심사항 안내

내부 설명의 기회를 통해 상고법원 판사 수, 임명방식 및 예상임기, 연구관 운영 문제 등을 안내할 필요 있음

☑ 인사 관련 직급별 관심사항

- ▶ **[지법 배석판사]** 장기적 관점에서 상고법원이 향후 법관으로서의 라이프 사이클에 미치게 될 영향 등
- ▶ **[단독판사]** 상고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전보 발령 기준 등
- ▶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법 배석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유지 여부, 현 직위에서 상고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 발령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
- ▶ **[지법 부장판사]** 상고법원 도입과 고등부장 전보 발령의 상관관계, 인사적체 해소 기여 여부 등
- ▶ **[고법 부장판사 이상급]** 상고법원 판사 임명 절차, 임명 기준 및 임기 만료 후 인사 패턴 등

출력물이나 파일 형태로는 배포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로 예상 인사경로 등 법관의 인사에 미치는 영향 설명 가능

▣ 이해도 제고를 위한 Q&A 자료집

● 법원 내부용 심층 Q&A 자료집 준비

추출된 계층별·직급별 법관들의 관심 사항, 의문점 등 정밀 분석 ⇨ 타깃별 분류화

(예시 ①) 인사 발령, 보직 관점에서의 계층별·직급별 관심 사항 등

- ▶ **[지법 배석판사]** 장기적 관점에서 상고법원이 향후 법관으로서의 라이프 사이클에 미치게 될 영향 등
- ▶ **[단독판사]** 상고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전보 발령 기준, 사법부 관료화 우려 등
- ▶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법 배석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유지 여부, 현 직위에서 상고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 발령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
- ▶ **[지법 부장판사]** 상고법원 도입과 고등부장 전보 발령의 상관관계, 인사적체 해소 기여 여부 등



▶ **[고법 부장판사 이상급]** 상고법관 임명 절차, 임명 기준, 상고법관 임기 만료 후 인사 패턴 등

(예시 ②) 상고법원 도입 취지, 제도 개요 등에 관한 의문 사항

- ▶ 인위적으로 승진 대상 보직이 늘어남에 따라 **법관 관료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 ▶ **현재와의 관계에서 대법원의 최고법원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 아닌지?**
- ▶ ‘헌법위반’ 또는 ‘판례위반’ 사유는 주장에 따라 얼마든지 성립 가능하므로, 결국 어정쩡한 **4심제가 되는 것 아닌지?**
- ▶ **사실심 충실화와 상고법원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와 닿지 않음**
- ▶ **상고사건 적체하는 주된 이유는 대법원이 하급심의 사실인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 ▶ 대법관 증원, 상고허가제는 차치하더라도, 고법 상고부, 대법원 이원적 구성 등 상고법원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제도 개선책도 많이 있는데, 왜 상고법원 제도만을** 사법부가 올인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밀어붙여야 하는가?**

분류화된 영역별로 체계적 답변 자료 작성

● Q&A 자료의 효과적 활용

사법연수원 **경력별 연수의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 강의를 통해 소개
 각급 법원 **법원장들에게 자료집 송부** ⇨ 소속 법관들과의 티타임, 오만찬 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내용 전달

각급 **법원 워크숍, 법관 간담회, 직급별 판사회의** 등을 통해 정보 제공
 다만,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자료를 배부하지 아니하고, 기획법관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정보 제공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코트넷 상고법원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안 검토**

■ 비공식 순회 간담회

● 법원장 순회 간담회

[개요] 일선 법원의 여론을 주도하는 **법원장과의 권역별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내부 소통 강화 계기 마련

[목적]

대내적으로, 소속 법관을 비롯한 법원 가족들의 상고법원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내부 결속 방안에 대한 쌍방향 의견수렴

대외적으로, 지역 언론, 유관기관 또는 유력 인사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방안 등 논의

[시행 형태 및 일정] 비공식적 회합 형태로 진행 + 권역별 분리시행

수도권 7. 7. 시행 / 충청·호남권 7. 31. 및 영남권 8. 5. 예정

● 각급 법원 비공식 순회 간담회

필요성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대면 간담회에서의 스킨십과 피드백을 통하여 공감대 형성과 심정적 결속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전국적 간담회 개최를 통해 사법부가 one-voice를 낼 수 있는 여건 조성
⇨ 특히 일부 지방권의 경우 지방변호사회 등은 상고법원에 강력반대하는 반면, 해당 지역 법관들은 무관심한 불균형 현상 해소할 필요

다수의 침묵하는 소극적 동조자보다는 소수라도 적극적 지지자가 필요한 상황 ⇨ 각급 법원에서 법관 여론의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는 법관들 중심으로 간담회 진행

지향점 설정

간담회 참석법관이 향후 상고법원 등과 관련한 각급 법원의 내부 소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허브(HUB) 법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①허브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정한 참석 법관의 선정, ②참석자에 대한 동기 부여 및 ③참석자의 사후 허브 활동 지원 및 점검이 매우 중요함

주제

상고법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참석 법관과 행정처에 모두 부담이 큼 ⇨ 상고법원을 중심으로 하되, 사실심 충실화, 경력법관 임용 등 주요 사법정책



현안을 아우르는 주제로 진행할 필요

대상 및 주관자

지법부장 간담회 ⇨ 사법정책실장 등 실장급 주관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 간담회 ⇨ 사법정책실 심의관 등 주관

⇨ 단,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에 대하여 평심의관이 정보의 면에서 우월하다고 하더라도 ‘설득 및 내부 결속 강화’의 측면에서 동료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부장급 이상의 주관 여부에 관한 추가 검토 및 정책 결정 필요

구체적 형태

식사를 곁들여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사적인 모임과 유사하게 진행

① 20명 이상의 규모가 되면 강당식 설명회와 유사하게 일방향적인 강의 및 정보제공에 그칠 가능성이 큼 ⇨ 쌍방향적 소통 및 교감 불가능

② 참석한 일선 법관들의 입장에서 간담회로 인하여 자신이 적극적으로 상고법원 등의 이슈에 관하여 설명 내지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고 마음먹을 동기 부여가 매우 부족함 ⇨ 단순히 행사에 동원되었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음

③ 현재는 언론과 코트넷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기본정보는 제공된 상황임 ⇨ 단시간의 간담회를 통한 추가 정보 제공만으로 법관들의 태도 및 감정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정보제공보다 정서적 교감을 통한 동기부여가 중요함

세부 일정(안)

7월 4째주(7. 20. ~ 24.) ⇨ ①서울동·남·북·서부지법 각 법원별 단독판사 1인, 배석판사 1인 합계 8명 ②서울 소재 모든 법원(고법판사 포함)의 지법 부장급 10명 (서울중앙 및 고등 각 2명, 나머지 법원 각 1명)

7월 5째주(7. 27.~31.) ⇨ 서울중앙 단독 및 배석 각 3명, 행정·가정 단독 및 배석 각 1명 합계 10명

8월 1째주 ⇨ ①수원·인천·의정부 법원별 각 3인(단독판사 2인, 배석판



사 1인) ②위 각 법원별 부장판사 2~3명

8월 2째주 이후 매주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시행 ⇨ 2째주 춘천 및 대전권역, 3째주 대구권역, 4째주 부산권역, 9월 1째주 광주권역

향후 계획

컨텐츠 준비 ⇨ ①사법정책실 및 사법지원실, 인사총괄심의관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Q&A 완성본 활용 ②자료 배포 없이 현장에서 구두로 설명

간담회 참석자 확정 ⇨ 기초실, ①법관 여론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 ②리더는 아니더라도 법관 내부 소통의 중심으로서 이른바 의제 설정 기능을 할 수 있는 법관, ③동료 법관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있는 법관

평소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소통이 가능한 경우 참석시킴으로써 실질적 소통의 장 모색

일정 및 장소 확정, 보고

간담회 결과 활용

①간담회 결과 정리·분석 ⇨ 하반기 내부소통 및 홍보 전략에 활용

②허브 법관들의 향후 활동 지원 ⇨ ①지속적인 컨텐츠 제공 등을 통해 소속감 및 책임감 부여 ②상고법원 논의에 관하여 각급 법원 기획법관과 상호보완작용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사후 지원 및 점점 철저

▣ 각급 법원 소식지 및 법원사람들 등의 매체 활용

- 1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매체를 활용한 홍보
- 코트넷을 통한 정보제공보다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장점

코트넷으로는 하기 어려운 ‘상고법원 경품 퀴즈’ 등의 아이টে도 활용 가능 ⇨ 상고법원, 사실심 충실화, 소수자보호 등을 주제로 8월호부터 실시 예정

- 심도 있는 연재기획도 가능



▣ 그 밖의 쏘법원적 홍보·소통 방안

- 가용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야 하는 상황임

그 중 내부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 모색

☑ **참고사례** ⇨ **일본 2009년 재판원제도(배심원 유사) 도입시 쏘법원적 홍보**

- ▶ '재판원의 여신'이라는 홍보학습만화 발간
- ▶ 유명 배우 출연하는 홍보드라마 '해매는 벚꽃' 후지TV 등 방송 및 홈페이지 게시
- ▶ 홍보노래는 물론 TV CM 지속 노출
- ▶ 재판원 제도 관련 **홍보용 오락게임 발매** 등 전방위 홍보

- 내부용 상고법원 해설 동영상 속편 제작

법안 발의 직전 코트넷에 게시한 '핵심정리 상고법원' 동영상의 속편 제작 ⇨ 해설자는 김○○, 노○○ 판사 가운데 선정

당시 동영상에 대한 반응 긍정적이었음

법안 발의 이후 상고법원의 경제적 효용 등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제작

- 전국 법관 토론회 개최 방안

사법연수원이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또는 희망 법관이 참여하는 상고법원 관련 토론회 개최

일선 법관의 **관심도** 및 상고법원 논의·도입에 관한 **절차적 정당성 강화**

특히 우리법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반대 법관들이 세 결집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전국 법관 토론회를 통해 상고법원의 정당성을 확인받는 절차 요건할 것임

- 코트넷 상고법원 게시판 효율적 활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관 상당수가 위 게시판 방문하고 있음

상고법원 웹툰 등 對국민 홍보용으로 만든 홍보물을 모르는 법관 다수 ⇨ 위 게시판에 게시하여 법원 구성원들부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

그 밖의 다양한 홍보물 적극 게시



- **경력별 법관 연수(9~10월 예정) 활용**

의견 수렴 및 설득의 계기로 적극 활용

사실심 충실화 방안은 사실심 법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과 상고법원안 연내 통과에 관한 긍정적 메시지 전달 필요

- **법원에서 생성되는 문건에 상고법원 로고 자동 표시 방안**

문서에 로고 생성 ⇨ 상고법원 접촉 기회 확대를 통한 친밀도 증대

법원의 안내문, 공문 등에 현행 대법원 로고 대신 상고법원 로고 자동 생성

외부는 물론 내부 구성원에게도 효과 있음

상고법원 노출 및 접촉기회 극대화를 위한 쏠법원적 홍보 방안의 일환

단 법원이 지나치게 상고법원에 얽매이는 인상을 줄 우려 있고, 홍보 문구를 법원 생성 문건에 모두 부착함은 법원의 권위에도 영향 줄 수 있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

- **[쏠법원적 홍보시 유의사항]** 공감대 결여된 채 같은 정보에 단순 반복 노출되는 것은 구성원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음

4. 사실심 충실화 홍보 방안

가. 홍보 필요성

- ▣ **상고법원 법률안 국회 심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필요**

- 법원 내부, 언론·국회 등 **피로감 최소화** 필요

- 입법 활동 공백기에 법원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사전 차단** 필요

- ▣ **법원 추진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상고법원 입법 추진 동력을 증대함과 동시에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

- **상고법원**이 단순히 대법원의 업무경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1심 충실화, 2심 사후심적 운용, 3심 법률심·정책심 기능의 회복이라는 이상적 심급구조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법부 정책의 큰 그림 속의 일부**임을 보여 줌으로써 상고법원 정책 추진의 진정성에 대한 이해 확보를 바탕으로 입법추진의 동력을 증대할 필요

- 상고법원 추진의 도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사실심 충실화 정책 추진 진정성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불식**시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

나. 홍보 목표(Goal) 정립

▣ ① 상고법원 정책 추진의 진정성에 대한 국민들과 법원 내부의 신뢰 제고

- **최근 10여 년 동안** 법원이 국민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온 **사실심 충실화 제도 및 실무개선 노력**을 보여 주고, 최근의 사실심 충실화 논의도 그 노력의 일환이며, 더 나아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 역시 재판업무 재설계를 통한 이상적 심급구조 실현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큰 그림의 한 부분**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상고법원 입법추진 동력을 증대할 필요
- 상고심 한 심급만의 구조를 개편한다는 관점에서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틀에서 벗어나 3심급을 관통하여 일관된 논리의 흐름을 갖고 분석하는 거시적 관점을 통해 입법 추진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 형성** ⇨ 동일 논리 반복 따른 피로감 최소화

▣ ②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신뢰 제고

- 사법부가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 잘 하는 법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신뢰를 제고



■ ③ 대법원장님의 사법발전계획 확인과 이행 의지 재천명

- 2012. 3. 공표된 대법원장님의 사법발전계획이 그 이전 대법원 정책을 승계하는 토대 위에 ‘법의 지배 확립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법정책목표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 사법제도 구현’,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제시했다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최근의 상고법원 도입, 사실심 충실화 노력이 바로 이러한 기본이념과 사법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보여 줌으로써 사법발전계획 이행의 의지를 재천명

다. 홍보 타겟(Target)

■ 일반 국민 ⇨ 정책 추진의 ‘일관성’ 강조

- 사법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이자 입법의 최종 권력자인 국민들의 지지 확보 필수적
- ‘재판 잘 하는 법원’을 위한 그간 법원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

■ 국회의원 ⇨ 새로운 프레임(Frame) 제공

- 상고법원 정책 추진에 피로감을 느낄 국회의원들에게 이상적 심급 구조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사실심 충실화 이슈를 던짐으로써 상고법원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새로운 ‘프레임(Frame)’ 제공

■ 법원 내부 ⇨ 정책 추진의 ‘진정성’ 강조

- 사실심 충실화, 상고법원 정책 추진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 줌으로써 정책 추진의 진정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내부 결속력 강화

라. 홍보 핵심가치(Core Value)

■ 법원 정책 추진의 일관성, 진정성에 대한 이해



- 법원이 국민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함

▣ 법원 정책을 실감나게 예고

- 사실심 충실화 및 상고법원 정책의 추진으로 실제 국민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보다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관심도를 높여야 함

▣ 법원 정책에 대한 친밀도 향상

- 법원 정책에 대한 친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유리한 입법환경 조성 위한 우호적 여론 형성

마. 홍보 방법

1) 언론매체 기능 활용

▣ ① [안전설정] 무엇이 매체 보도 사안이 될 것인가?

- 그간 법원이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쏟아 온 노력, 최근의 사실심 충실화 개선방안을 주도적으로 꾸준히 언론 지상에 노출시킴

▣ ② [안전정의] 사안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 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정책의 추진으로 국민들이 얻게 될 이익, 사회적 효용 등 부각시키고,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상적 심급구조 실현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사실심 충실화를 바탕으로 항소심 심리방식 개선, 상고심 구조 개편이 불가피함을 강조

▣ ③ [여론정의] 언론매체가 어떻게 뉴스를 선별하고 보도하는가?

- 대법원이 '재판 잘 하는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전 심급을 통틀어 총체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 사실심 충실화,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그리는 큰 그림을 구성하는 조각들의 일부



이고, 그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져야 비로소 제대로 된 재판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

2) 홍보 매체와 홍보 방법

▣ 신문 등 전통적 지면 매체 활용

- 그간 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노력, 최근의 사실심 충실화 개선방안 등에 관해 **특집 기획 기사** 게재
- 개별 개선방안에 관해 관련 전문가의 **우호적인 기고문** 게재 등

▣ 퍼블리시티 스텐트(Publicity Stunt) 활용

- 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 도입,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개선 등 사실심 충실화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하여, 언론의 관심 유인

바. 홍보 일정 ⇨ 2015. 7. ~ 10.

- ▣ 상고법원 입법 활동 공백기를 채우고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홍보
- ▣ 상고법원 입법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홍보전략 최적화

사. 홍보 콘텐츠

1) 개요

- ▣ 최근 약 10년 동안 사법부가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소개하고, **그간의 노력과 최근의 개선 노력이 같은 지향점을 향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었음을** 부각
- ▣ **민사, 형사, 가사 분야별로** 사실심 충실화 추진성과와 최근의 개선 노력을 **스토리텔링**으로 전달

2) 예시(민사)



■ 전체적인 흐름

- 신민사사건 관리모델의 도입(최○○ 대법원장님) ⇨ 구술심리 강화(이○○ 대법원장님) ⇨ 1심 집중(양승태 대법원장님)
- 시기를 관통하는 공통 이념 : “사실심 충실화를 통한 국민의 권리 보장”

■ 상세 설명

- 사실심 충실화의 이념적 근거(2012. 3. 사법발전계획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 참조)

모든 국민은 법의 지배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법의 지배는 공정한 재판에 대판 국민의 믿음 속에 뿌리 내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 꽃 피울 수 있음

결국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는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잘 함으로써 보장되고, ‘재판을 잘 한다는 것’은 ‘사실심 재판의 충실화’에서 출발하여 ‘법률심 재판의 정책 기능 강화’에 이르기까지 각 심급의 재판이 그 역할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

- 사실심 충실화의 지향점

재판의 본질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분쟁의 공정한 해결 ⇨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재판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판수요자인 국민들로부터 재판이 공정하고 효율적이라는 신뢰를 받아야 하고, 재판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재판의 결론과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국민을 위한 합리적 사법제도 구현”,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기여하는 법원” 구현을 통한 국민의 신뢰 확보

- 사실심 충실화의 구체적 목표



① 재판 결론에 대한 신뢰는 객관적으로 실체에 부합하는 결론 도출을 해 낼 수 있는 재판역량의 확보와 연결됨

② 재판 과정에 대한 신뢰는 주관적으로 당사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심리방식의 운영과 연결됨

③ 재판 결론 및 과정에 대한 신뢰 형성의 근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소송절차 관련 법령 정비의 튼튼한 토대 위에 서야 함 ➡ 합리적인 사법제도 기본 인프라 구축

- ① **훌륭한 재판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법관의 역량 강화, ②심리여건의 개선, ③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판역량 최대화, ④효율적인 사건 관리, ⑤법원의 전문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법관의 역량 강화

- 경험 많고 경륜 있는 법관의 사실심 집중 배치
- 2018년부터 1심 전체 단독재판부의 50% 이상 부장판사 배치
- 소액, 중액사건 전담법관 임용 확대

▶심리여건의 개선

- 법관 증원을 통한 법관 1인당 사건부담 경감
- 민사 사물관할 조정에 따른 재판부 증설 통한 재판부 1개당 사건부담 경감
- 비법관 ADR 활성화
- 조기조정 활성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판 역량 최대화

- 참여관 역할 확대를 통한 법관 역량의 분쟁성 사건 심리 집중
- 사법보좌관에 의한 이행권고결정 도입
- 공시독촉제도 도입

▶효율적인 사건 관리

- 집중심리 ➡ 신모델 ➡ 법정 중심 심리

▶법원의 전문성 확보

-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 감정절차의 개선 노력
- 특성화 법원 제도 도입 검토



-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 검토
- 민·형사법관의 분리 및 전문화

- ② 만족감을 주는 심리방식 운영을 위해서는 ①당사자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②당사자와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③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④투명하며, ⑤편리해야 함

- ▶ 당사자 참여기회 확대
 - 구술심리 강화
 - 조기변론기일 지정
 - 시차제 기일 지정
 - 당사자 변론종결 전 최종진술 제도 도입
 - 당사자본인신문 활성화
- ▶ 당사자와의 소통 강화
 - 법정 언행 컨설팅
- ▶ 예측가능한 재판 ▶ 법관의 재량 기준 공개
 - 증거채부 기준 공표
 - 위자료 기준 공표
 - 과태료 기준 공개
 - 양육비 기준 공개
- ▶ 절차의 투명성 제고
 - 증인신문절차 등에 대한 법정녹음에 의한 변론기록방안 시행
 - 민사판결서 공개
- ▶ 당사자의 편의성 증진
 - 전자소송의 확대

- ③ 합리적인 소송절차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에 필요한 분야

- ▶ 영상전송에 의한 증인 등 신문방식 도입
- ▶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개선
- ▶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 도입
- ▶ 당사자의 소송상 진술방식 개선
- ▶ 감정절차의 개선



- ▶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현실화
- ▶ 간접강제금 제도 정비 및 기준 마련

● 합리적인 사법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실심 충실화 정책의 자리매김** : 재판의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

재판 불복절차와 심급제도를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이 효율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당사자가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당사자와 법원의 자원을 최소화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

이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이상적인 심급구조 실현 노력**으로 연결됨. 피라미드형의 이상적 심급구조 실현은 그 밑바탕을 이루는 사실심이 튼튼히 받쳐 주어야 비로소 가능함. 결국 사실심 충실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의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임

심급별 재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 역할에 맞게 실무를 운영하여 심급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 분쟁이 각 특성에 맞게 적정한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시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지연의 정도를 한 심급만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심급을 통틀어 분쟁이 실질적으로 종결되는 데 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파악**할 필요

[구체적인 실천 목표]

- ▶ 1심 집중
 - ① 법정 중심의 심리, ② 충분한 쟁점심리, ③ 폭넓은 증거조사, ④ 절차 협의의 강화
- ▶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 ▶ 상고심 구조의 재판

■ **사실심 충실화 개념도 : 별지 표 참조**



아. 홍보 계획(안)

1) 세부 계획(안)

▣ 법률신문 특집 기획 기사

● 사실심 충실화 특집 기획기사 2회 연재

최근 10여 년 동안 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노력을 정리하고 최근의 사실심 충실화 개선노력이 그간의 노력과 지향점을 같이 하는 일관된 정책 추진임을 보여 줌

필자 : 법률신문 기자(법원행정처에서 기사 자료 제공)

기대효과 : 법조계 전체의 사실심 충실화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정책 추진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

시기 : 2015. 7. 하순 ~ 8. 초순

▣ 중앙 일간지 기고문 게재

● 사실심 충실화 논의의 이념적 근거에 관한 기고

대법원장님의 사법이념인 ‘법의 지배 확립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실현과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사실심 충실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기고문

필자 : 명망 있는 헌법학 교수

기대효과 : 사실심 충실화 논의가 국민 신뢰 확보를 명분으로 즉흥적으로 제기한 이슈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제기한 도구적 주제가 아님을 보여 줌으로써 정책 추진의 진정성에 대한 이해 제고

시기 : 2015. 7. 하순

●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에 관한 기고

민사재판 사실심 충실화 논의의 목적이 피라미드형의 이상적인 심급 구조 실현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에 있음을 강조



하는 기고문

필자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유○○ 교수(민소법 전공,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민사소송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 적극 찬성론자)

기대효과 : 민사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을 강조함으로써 법원이 상고심 구조 개편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심급 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상고법원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간접적으로 홍보

시기 : 2015. 8. 중순

● 사실심 충실화, 상고법원 정책을 큰 그림으로 조망하는 명망가의 기고

사실심 충실화 논의와 상고법원 정책 추진이 별개의 논의가 아니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각 심급의 재판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일관된 목표 아래 추진되어 온 법원의 정책임을 큰 그림으로 보여 주는 기고문

필자 : 법원 정책을 조망할 수 있는 식견을 인정받는 권위 있는 법조 원로계 필자 필요

기대효과 : 법원의 최근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임을 큰 그림으로 보여 줌으로써 상고법원 추진을 대법원의 편의 내지 권위 유지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폄훼하는 반대 여론을 잠재움

시기 : 2015. 9. 초순(정기국회 국정감사 이전)

■ 정책세미나 개최

● 국회의원 주최 정책세미나 개최

주제 후보 : 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의 도입,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개선

주최 국회의원 : 전해철 의원(또는 김진태, 김도읍, 이한성 의원)

기대효과 : 언론의 관심 집중 유도 및 상고법원 반대 의원과의 협력 관계



형성

시기 : 2015. 8. 하순

▣ 유관기관 합동 심포지엄 등 개최

●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현실화 공동 심포지엄 개최

주최 : 법원행정처, 법률신문, 대한변협 공동개최

기대효과 : 대한변협도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현실화에는 찬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간 대립관계로 비쳐진 대한변협과 의견을 같이 하는 주제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언론에 우호적인 분위기 전달. 법률신문을 개최자에 추가함으로써 두 기관의 중간자 역할과 홍보 극대화를 도모

시기 : 2015. 9. 하순

●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 공동 심포지엄 개최

주최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참여연대 공동개최

기대효과 :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전문가의 사법참여 확대에 관심을 보일만한 참여연대를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 입법 추진 동력 확보

시기 : 2015. 10. 초순

● 특성화법원 제도 도입 공동 심포지엄 개최

주최 :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공동개최

기대효과 : 부산지법에 해사분야 특성화법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서울 중심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부산·경남 지역 여론 전환 유도

시기 : 2015. 10. 중순

▣ 홍보 책자, 동영상 제작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법원이 기울여 온 노력을 리플릿, 동영상으로 제작·배포



- 콘텐츠 : 별지 표 참조

- 시기 : 2015. 9. 중순(국회 국정감사 이전)

▣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발간

-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구성, 활동경과, 회의자료, 건의문 등을 종합 정리한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향후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시기 : 2015. 10. 중순(발간 시기까지의 심포지엄 개최 등 추진 경과를 담은 보고서 발간)

5. 하반기 홍보 방안 로드맵 : 별지 참조

IV. 향후 계획

▣ 수립된 홍보 방안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 점검

- 주무 실국별로 홍보 방안 전체 로드맵에 따른 실행 계획 점검
- 상고법원 입법 성사라는 단일 목표 수행을 위한, 홍보 콘텐츠 및 일정 조율 등 실국간 협업체제 유지

▣ 홍보 콘텐츠 확보 노력 경주

- 기고문 등 기사 아이템, 방송 콘티 등 제작 후 언론사 제공
- 여론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 있고, 신선한 홍보원 발굴, 섭외
- 뉴미디어 홍보 콘텐츠(동영상, 웹툰, 포스터 등) 제작

상고법원 뉴미디어 홍보팀 운영 ⇨ 외부 제작 업체, 웹툰 작가와의 협업을 통한 콘텐츠 구상, 개발

[동영상] 외부 전문 제작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7. 20.경까지 제작 완료 예정

[웹툰] 유명 웹툰 작가(김○○) 섭외 ⇨ 연재 방식으로 12회 웹툰 제작하



기로 협의 완료

옵니버스식 만화책으로 편집, 제작하는 방안 검토

[포스터] 시안 제작 중 ⇨ 대내외 의견 수렴 후 7월 말까지 제작 완료 예정

■ 대내외 홍보 방안 실행

- [대국민 홍보] ①신문, 방송 등 전통 매체 홍보 지속, ②인터넷, SNS, 지하철 행선기, 사법부 내부 자원(국민과의 소통 프로그램 등) 등 다양한 홍보 플랫폼 전방위 활용, ③유관기관과의 정책세미나, 심포지엄, 학술대회 등 개최 추진
- [사법부 내부 홍보] ①상고법원 내부 Q&A 자료집, 해설동영상 제작·배포, ②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개최, ③코트넷 게시판 활용, ④경력별 연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이해도 심층화 추진 등

■ 홍보 위기 대응 시스템 가동

- [위기 상황 파악] 상고법원 관련 부정적 보도 분위기 감지 시, 다른 현안보다 최우선하여 신속히 보고
- [대응 방안 수립] ①해당 언론사 및 기자로부터 기사 개요 파악, ②보도 자제 및 보도 수위 툠다운 요청, ③동시에 대응 논리 및 방안 구축
- [대응 방안 실행] 반대 논지에 대척할 수 있는 논리 등 효과적인 카운터 콘텐츠로 대응 기사 게재, 관련 쟁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등 추진 ⇨ 대세에 영향 없는 단발성 돌출성 기사로 고립화시켜, 부정적 여론 확산 조기 차단 [끝].

3심 법률심

2심 사후심적 운용

1심 심리 충실화

사실심 충실화

이상적
심급구조
실현



사실심
충실화
토대
마련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질적
보장

재판 결론에
대한 신뢰

① 법관의 역량 강화

- 경험 많고 경륜 있는 법관의 사실심 집중 배치
- 2018년부터 1심 전체 단독재판부의 50% 이상 부장판사 배치
- 소액, 중액사건 전담법관 임용 확대

② 심리여건의 개선

- 법관 증원을 통한 법관 1인당 사건부담 경감
- 민사 사무관할 조정에 따른 재판부 증설 통한 재판부 1개당 사건부담 경감
- 비법관 ADR 활성화
- 조기조정 활성화

③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판 역량 최대화

- 참여관 역할 확대를 통한 법관 역량의 분쟁성 사건 심리 집중
- 사법보좌관에 의한 이행권고결정 도입
- 공시독촉제도 도입

④ 효율적인 사건 관리

- 집중심리 ▶ 신모델 ▶ 법정 중심 심리

⑤ 법원의 전문성 확보

-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 감정절차의 개선 노력
- 특성화 법원 제도 도입 검토
-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 검토
- 민·형사법관의 분리 및 전문화

재판 절차에
대한 신뢰

① 당사자 참여기회 확대

- 구술심리 강화
 - 조기변론기일 지정
 - 시차제 기일 지정
- 당사자 변론종결 전 최종진술 제도 도입
- 당사자본인신문 활성화

② 당사자와의 소통 강화

- 법정 언행 컨설팅

③ 예측가능한 재판 ▶ 법관의 재량 기준 공개

- 증거채부 기준 공표
- 위자료 기준 공표
- 과태료 기준 공표
- 양육비 기준 공표

④ 절차의 투명성 제고

- 증인신문절차 등에 대한 법정녹음에 의한 변론기록방안 시행

⑤ 당사자의 편의성 증진

- 전자소송의 확대

합리적 소송절차 관련 법령의 정비



[홍보방안 로드맵]

		7월		8월		9월		10월	
		상고법원	사실심 충실화	상고법원	사실심 충실화	상고법원	사실심 충실화	상고법원	사실심 충실화
신문	기고	중앙지 기고 2-3개	사실심 충실화의 이념적 근거	중앙지 기고 4개 지방지 특집기사/기고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	중앙지 기고 4개 지방지 특집기사/기고 논설위원 칼럼	사실심 충실화, 상고법원 큰 그림 조망	중앙지 기고 4개 논설위원 칼럼	
	기사	상반기 논의 종합기사 시뮬레이션 제3자 의견서 제도	법률신문 연재 1회	상고법원 비용 하급심 판사 경력 계산	법률신문 연재 2회	소가, 당사자 수 대안 전수조사			
	인터뷰	前 대법관 인터뷰		긴즈버그 인터뷰 미국판사 제언 대안별 구체화·토론회		전대법관 인터뷰 관훈토론회 법조기자단 설명회 대안별 구체화·토론회(계속)		사회 각계 10인 제언	
방송	라디오	TBS 고○○(아침)		CBS 박○○(아침)		KBS 홍○○(아침) KBS 공감토론(저녁)		MBC 신○○(아침) CBS 정○○ 인터뷰(저녁)	
	지상파	뉴스 심층보도		뉴스 심층보도		심층보도 - KBS 취재파일 K - MBC 시사매거진 좌담 - KBS 시사진단, 일요진단 -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뉴스 스튜디오 대담 -KBS 뉴스라인 -SBS 나이트라인 토론 - MBC 100분 토론 - KBS 생방송 심야토론	
	종편			TV 조선 장○○의 시사탱크 채널 A 쾌도난마		JTBC 뉴스룸		TV 조선 시사토크	
학술지			경제효과 논문		헌법 쟁점 논문		법안·대안 소개 논문	백서 발간	
세미나			사실심 학술 세미나	소제기전 증거조사제도, 문서제출명령 제도 개선	공동 학술 세미나 (상고법원+사실심)		사실심 정책토론회		
유관기관 합동 심포지엄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현실화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 특성화법원 제도 도입	
내부	Q&A 자료집 순회 간담회	순회간담회	해설동영상 순회 간담회 법원사람들	법원사람들	법관연수 의견수렴		법관연수 의견수렴		

상고법원 법률안 발의 경위

■ 시기적 불가피성으로 인해 사전 조율의 여력 없었음

- 상고사건 적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19대 국회 임기만료 전 입법 성사를 위해서는 법률안 발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
- 대법원은 2014년 하반기부터 상고법원 법률안 준비 ⇨ 19대 국회 임기 만료(2016. 4.) 전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는 약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만 남아 있었던 상황
- 통상의 전례를 보면, 법률안 발의 전 정부 등 이해단체와 사전 교감을 거치는 데에만 수년의 시간이 경과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되기도 함 ⇨ 구체적 사례는 별지와 같음

■ 대법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상고법원 법률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발의에 초점 ⇨ BH 등과의 의견 조율 중요성 간과

- 특허법원,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원조직이나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안 ⇨ 정부입법 대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으로 입법한 선례 존재
-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도, 소관 법률을 대부분 정부 제출이 아닌 국회 상임위 제출이나 의원 발의 형식으로 처리
 -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은 총 59회 제출되었으나, 정부 제출은 단 2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법사위원장 제출이나 의원 발의 형식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소관 법률인 공직선거법 등을 법무부 또는 정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회에 제출하여 처리(위원장 발의)하고 있음

■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당연히 BH 의사 반영될 것으로 예상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BH 등 정부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 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지금도 열린 자세로 상고법원에 대한 BH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할 계획임

[별지] 종래 **정부 입법** 과정에서의 **처리 지연** 또는 **기피 사례**

- 대법원이 법무부에 법률안 송부하였으나, ①법무부가 법률안 발의하지 않거나, ②법률안 발의 시까지 수년 이상이 소요된 사례

① 행정소송법 개정안

- 2011. 11. 법무부 산하 행정소송법 개정특별위원회 구성 ⇨ **대법원도 참여**
- 2013. 3. 법무부와 대법원 사이의 합의안 도출하여 입법예고
⇨ 정부(법무부)는 아직까지 **법률안 미제출**

②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 절차조정법 제정안

- 2008. 11. 대법원 ⇨ 법무부에 법률제정안 송부
- 법무부 ⇨ 법률 내용 복잡하다는 이유로 검토 지연하다 결국 **법률안 미제출**

③ 상업등기법

- 2002. 1. 대법원 ⇨ 법무부에 법률안 송부
- 2006. 3. 정부 ⇨ 국회에 법률안 제출 (**약 4년 2개월 소요**)

④ 비송사건절차법

- 2002. 1. 대법원 ⇨ 법무부에 법률안 송부
- 2006. 3. 정부 ⇨ 국회에 법률안 제출 (**약 4년 2개월 소요**)

⑤ 사법보좌관법

- 1999. 2. 대법원 ⇨ 법무부에 법률안 송부
- 2004. 9. 정부 ⇨ 국회에 법률안 제출 (**약 5년 7개월 소요**)

- 정부입법 과정에서 법무부 개입으로 **핵심 내용 변경된 사례**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민법상 호주제가 2008. 1. 1.부터 폐지됨에 따라 호적법을 대체할 법률을 시급히 마련해야 했던 상황
- 대법원은 2005. 8. 2. 호적법을 대체할 법률로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법무부에 송부
- 법무부는 대법원이 제출한 **법률안의 핵심 내용을 변경**(사무관장기관을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변경)하여 2006. 3. 3.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
- 대법원은 어쩔 수 없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발의
- 국회 논의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사무관장기관을 대법원으로 함) 제시되어 2007. 4. 27. 국회 통과
- 법무부의 개입으로 인한 법률안 핵심 내용 변경 때문에 대법원이 법률안을 법무부에 송부한 시점(2005. 8. 2.)부터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2007. 4. 27.)되기까지 **약 1년 9개월 소요**

VIP의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 실질적 보장

- 기본인식 ⇨ **VIP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는 상고법원 판사에 대하여도 존중되어야 함**
- 상고법원 판사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 **VIP측 위원이 사실상 과반수로서 추천 주도하도록 구성**

	대법관후보추천위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안)
당연직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선임대법관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비당연직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VIP 지명 3명
	학식, 덕망 있는 비변호사 3명	학식, 덕망 있는 비변호사 3명
종합	10인 중 행정 1명, 사법 3명, 재야 1명, 당연직교수대표 2명, 일반 3명	9인 중 VIP측 4명 , 재야 1명, 사법 1명 , 일반 3명

- 사법부와 무관한 인사가 과반수 ⇨ 타 위원회에 비하여도 **과격적 구성**
- **추천위원회의 실질적 인선 기능 보장**
 - 상고법원 판사 임명 대상자를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로 **한정하는 명문 규정 도입** ⇨ 자문 기구가 아니라 검증·선정하는 인사심의 기구
-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VIP 意中 관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피추천자 중 후보자 최종 선택과정**에서도 **BH의 의중이 반영되도록 보장** 것임
 -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판사 실질적 임명권한 포기** ⇨ **상고법원 신설**은 고위법관 직위 신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고사건을 더 이상 처리하기 어려운 절박함**과 심리불속행 폐지로 **국민의 권리 보장하기 위해서**임

정부 운영 관련 중요 사건은 대법원에서 처리

■ [기본 인식] ①정부 운영에 영향 미치거나 ②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었거나 ③국가적·사회적 이목 집중되는 사건 ⇨ 상고법원 설치되더라도, 여전히 **대법원에서 상고사건 처리**

■ [구체적 방안①]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확대**

- 현재의 법률안에도 여러 중요 사건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연간 **약 160~180건**으로 추정, 현재 연간 20여건인 전원합의체 사건 수보다 상당히 늘어난 것
-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범위 얼마든지 재조정할 수 있음
- BH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 가능

☞ 예컨대, ①공선법 위반 사건 전체, ②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체, ③1심 형사합의사건 전체, ④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행정사건 등

■ [구체적 방안②] **국가적·사회적 중요 사건은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분류**

- 상고법원 제도는 상당수의 상고사건을 상고법원에 떠넘겨 대법원의 업무 적체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님 ⇨ 오히려,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 확립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규범형성 기능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 대법관이 담당하는 사건 분류 절차에서 정부 운영과 관련된 국가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은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정해질 것

☑ BH 등 정부의 공식적 영향력 행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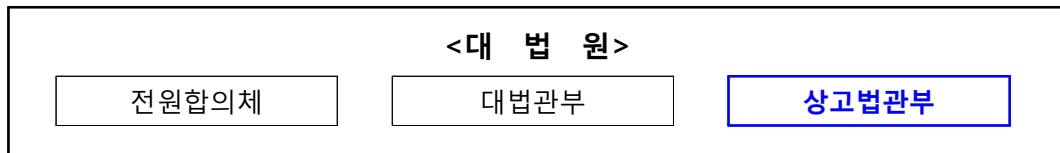
- ▶ 올해 초 상고사건에서의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Amicus Curiae) 도입 ⇨ 정부가 사건 분류 단계에서 특정 사건을 대법원 심판사건으로 정해 달라는 공식적 의견 개진 가능
- ▶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정부 의견은 대부분 수용·반영될 것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가능

■ [기본 인식] 별도의 조직과 시설을 갖춘 독립된 상고심 법원 신설 방안만을 고집하는 것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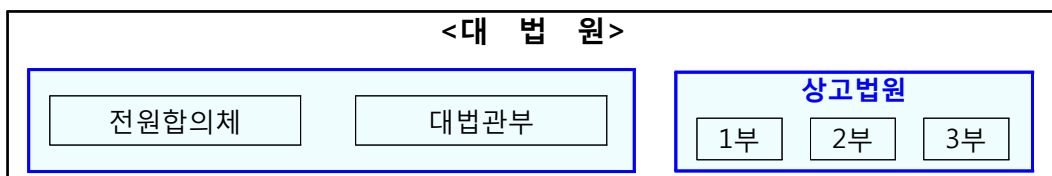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고제도 개선의 여러 합리적 방안 중 하나로 상고법원 신설을 제시한 것임
- 상고법원 도입은 대법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차선책일 뿐, 사법부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이 절대 아님

■ [구체적 방안①] **대법원 내 별도 재판부로 설치**



- 별도의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재판부로 구성
- 상고법원장, 사무국 등을 설치하지 않음

■ [구체적 방안②] **대법원 내 독립된 재판조직으로 설치**



- 상고판사로만 이루어진 재판부를 묶어 별도 조직을 구성함
- [사례]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동경고등재판소 내 '특별지부1)'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소장, 재판관회의, 사무국을 두고 있음

■ **대법원 내 설치 방안의 기대 효과**

- 현재 대법원의 조직 일부를 상고법관부로 재편하는 방식 ⇨ 추가 예산·시설 소요 발생 우려 높지 않음
- 대법원 내 상고법관부에 대한 대법원장의 컨트롤 충분히 가능
- 4심제 논란 야기하는 특별상고도 폐지할 수 있음

1) '지부'는 지역적 관할을 달리하는 개념이나,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동경고등재판소와 관할을 같이 하고 담당하는 사건의 종류만 다르다는 의미에서 '특별지부'라고 함



대한변협회장 관련 대응 방안

2018. 7. 31.

사장

1. 검토 배경

▣ 대법관 제청 절차 관련 일부 언론 보도

- 경향신문 2015. 8. 10.자 “대법관후보추천위 ‘진보라서 안돼’...특정 후보 결국 탈락” 제하 보도 ⇨ 국민, 법조계, 법관 사회 등의 여론에 악영향

▣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변협회장’)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논의 내용 왜곡·발설

- 특히 김○○ 위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함 ⇨ 그 내용이 아직 보도 전이라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음

▣ 변협회장의 잇단 기행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

-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개업신고서 반려 등 월권·노이즈마케팅 행태를 계속 ⇨ 상고법원 추진에도 큰 걸림돌 중 하나

2. [총론적 접근] 프레임 전환

▣ 프레임 자체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이 아니라 ‘**변협회장의 동니**’로 전환할 필요

- 현재의 프레임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의 틀이 유지되어 이슈화가 계속될 경우 ⇨ ‘대법원 기득권 유지’ 이미지가 강조되어 대법원에 불리하고, 특히 상고법원 추진에 부정적 영향 우려

☑ 부정적 관심의 전환 방향

▶ [대상] ‘대법원’ ⇨ ‘**변협회장**’, ‘하○○’



- ▶ [상황]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파행' ⇨ '논의 내용 왜곡·발설', '변협 천거 후보 탈락에 불만을 품은 돌출 행동'
- ▶ [의도] '대법원 기득권 유지' ⇨ '변협 이익 극대화', '변협회장의 개인적·정치적 욕망 추구', '진보적 대법관 옹립'

■ 특히 변협회장이 옹립하려 하였던 대법관 후보가 정파적 편협성이 우려된 후보였음을 지적하여 우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 vs. 변협회장'의 1:1 구도가 아니라 '온건 vs. 급진'의 多:多 또는 多:1 구도로 재편하여 대응할 필요

☑ 구도 재편에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지형

- ▶ 변협회장의 발설 내용은 진보 성향인 경향신문에 의하여 '진보 대법관 후보 배제'를 이슈로 보도되어 있음
- ▶ 김○○ 변호사는 당초 변협 추천 당시부터 '통진당 변호인단장' 경력으로 보수 단체(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등)로부터 자진 사퇴 촉구를 받음
- ▶ 또한 김○○ 변호사 추천을 두고 "변협이 민변의 입김 아래 있다"는 지적·비판도 이루어진 바 있음
- ▶ 변협회장이 그동안 주창해온 '대법관 증원론'의 본래 의도가 결국 민변이 추진하고 있는 '진보 대법관 옹립'인지까지 의심될만한 상황

- 무엇보다 변협회장의 이번 행태는 공익을 위한 순수한 휘슬블로어 [whistle-blower, 내부고발자] 역할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라도) 특정 정파에 유불리가 있을 수 있는, 정치적 목적 있는 행위였음을 부각하여야 함

- 대법원이 '공공의 적' 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음

■ '대한변협'이라는 단체에 대한 비판보다 직능단체 '대표', '하○○ 개인'의 포퓰리즘·무한이기주의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필요함

- 변호사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위험 ⇨ 변협회장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진 변호사 세력의 목소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하○○ 개인'의 특이성·위험성을 부각하여 각계 우군 확보와 견제 여론 형성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하○○ 변협회장의 특이성·위험성



- ▶ 공공연하고 무조건적인 주류 세력 적대 성향 ⇨ “나는 원래 밑바닥에서 출발한 사람...25년간 판사·검사에게 무시당해옴”
- ▶ 상황·이익에 따라 지향점·소신 변화무쌍 ⇨ ① “내가 사법개혁을 주장해서 그렇지 정치 성향은 보수다” vs. 진보 대법관 응립 추진, ②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③ 사법시험 존치론에 대한 변호사 밥그릇 확보 논쟁
- ▶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 불사 ⇨ (차 전 대법관 개업신고서 반례에 대하여) “법을 따지면 할 말이 없다...이렇게 눈앞에서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나”
- ▶ 정치적 야망 다분 ⇨ (본인은 부인하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 모색설, 변협 공보이사 시절부터 의도적으로 언론과 우호적 관계 확보, 만일 출마한다면 여당보다는 야당 공천 추진 예상됨

3. [각론적 접근] 우회적 대응

- ▣ 대법원이 직접 대응하는 것은 **최고법원의 위신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협회장의 노이즈마케팅 의도에 오히려 부합하게 될 우려**
⇨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대응을 각론적 접근의 기본 원칙으로 함
- ▣ 1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 등을 통한 대응**
 - [개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표이자 변협회장의 명예훼손적 발언의 피해자격인 김○○ 위원장 등을 통한 유감 표명 등
 - [장점] 선명한 주장이 가능
 - [단점] 김○○ 위원장 등이 나서줄지가 의문, 개인 간 갈등 양상으로 비춰질 우려, 근본적인 프레임 전환과 지속적인 여론 조성에 한계, 변협회장의 노이즈마케팅 의도에 오히려 부합
- ▣ 2안: **언론기관 등을 통한 대응**
 - [개요] 언론기관, 특히 보수 성향 언론기관의 칼럼 등을 통한 문제 지적, 우려 표시 ⇨ 변협회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보

☑ 예시

- ▶ [제목] ‘변협회장의 몽니’, ‘변협의 의심스러운 행보’ 등
- ▶ [내용] ‘변협 특히 신임 회장은 걸으로는 사법개혁을 주창하지만, 정작 형사



성공보수금약정 무효 판결 헌법소원 등 밥그릇 지키기에 주력하면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도 하는 무리한 행위를 일삼고, 최근에는 자신들이 천거한 진보적 대법관의 추천 확보에 실패하였다고 하여 비공개 회의 내용을 왜곡·발설하는 이념적 행보까지를 취하는 듯한 상황...우려 표시...'

- [장점] 변협회장이 정치적 욕망이 있다면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방식, 사안의 본질부터 접근하는 내용이 담긴다면 근본적인 프레임 전환과 지속적인 여론 조성도 꺾할 수 있음
- [단점] 언론기관 설득에 상당한 행정적 노력 소요, 냉소적 반응도 우려

▣ 기타: **무시·고립 전략**

- 원교근공(遠交近攻) ⇨ ①변협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무대응, 특히 앞으로 공식적·의례적 접촉 이외에 비공식적·실질적 접촉은 없을 것임을 고지함, ②그 대신 지역변회와 소통은 더욱 강화하고 공고한 유대 관계 구축
- 변협을 고립시킴으로써 대립·갈등 관계 조장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점을 변협 스스로 인식하도록 함. 끝.

중요 사법정책 추진기의 조직문화 개선 방안 검토

2018. 7. 31.

법원행정처

I. 검토 배경

- ▣ **젊은 법관을 중심으로 법원 조직 문화에 대한 갈등·불만이 상당함**
 - 최근 각급 법원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고법원 순회간담회**에서 다양한 불만·건의 사항이 제기되었음
- ▣ **특히 최근 이○○ 판사 사망 사고 이후로 젊은 법관들의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 불만의 목소리가 법원 조직문화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다소 우려스러움

☑ Daum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게시판 중 "이○○ 판사님의 죽음을 보며..."라는 글에 달린 댓글 중 일부

- ▶ "다 같은 판사인데 상급자 스트레스나, 헌법상 독립된 기관인데 내부 경쟁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는 전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그런 걸 판사들이 느낀다는 게 이 조직에 문제가 쌓여간다는 의미 아닐까요?"
- ▶ "최근 수년간 과거와 달리 사법행정권이 지나치게 중앙집권화, 비대화, 권력화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힘의 균형을 맞추려면 판사회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역할과 유사하게요. 판사회의 관련 제반 법 규정과 내규를 숙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고법원, 고등부장 제도 부활과 같은 중대 사안 추진 시 판사회의와 관련이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 **갈등·불만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불만을 즉시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근본적 처방을 함께 검토함
 - 특히 올 하반기는 사법부의 역량이 최대한 집중되어야 할 시기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II.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무엇보다도 **지방법원 배석판사들로부터 부장판사의 합의부 운영 방식 내지 합의부 조직 문화에 대한 갈등·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2014년 법원문화연구반 운영 결과, 최근 실시된 각급 법원 상고법원 순회 간담회 결과 등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남
 - ‘부장과 식사도 하기 싫다’ 라는 식의 노골적 불만 표출 사례가 많고, 그 내용의 구체성·強度 등에서 심각한 정도인 것으로 보임
- **단독판사들로부터는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각종 사법정책에 관한 불신을 제기하는 여론이 널리 확산되고 있음**
 -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상명하달식 사법행정 추진에 대한 이성적 불만도 상당하나, 특히 이○○ 판사 사고 이후 감성적으로 크게 동요

2. 문제점

-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러한 갈등·불만이 제기·심화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
 - 법관의 라이프 사이클 중 지방법원 배석판사 보임 기간이 가장 고단한 시기임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님**
 - [理想]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인 업무 수행 희망 vs. [現實] 업무 노하우와 인생 경험 부족으로 인한 도제식 재판부 구성 불가피
 - 또한 단독판사들이 사법행정 당국에 대하여 냉소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일상적인 현상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갈등·불만이 지나치게 심화되는 것은 이상 징후에 해당함 ⇨ 심각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눈여겨보아야 함



▣ 특히 특정 재판부·법관의 문제가 아니라면, **현재 조직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인을 분석해야 함**

- 단순히 특정 재판부나 법관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 지방법원 부장판사 주력 기수인 23~29기 법관과 배석판사 주력 기수인 36~42기 법관이 유별나게 문제가 많은 집단일 수도 없음 ⇨ 단순히 부장 vs. 배석의 전통적·미시적 문제가 아님을 시사

☑ 이른바 '신세대 법관'의 가치관 변화가 주된 원인?

▶ '신세대 법관'의 가치관 변화의 내용

- 개인주의적 성향의 증대 ⇨ '국가'나 '사회' 등 '공적인 영역'보다 '개인'을 우선시하고 개인에게 구체적인 이익·불이익이 발생하는 분야에만 관심
- 일 보다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확산 ⇨ 가정생활이나 여가 생활에 매우 큰 관심

▶ 이와 같은 가치관 변화도 합의부 중심의 조직 문화에 대한 불만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전통적 의미의 합의부 중심 조직 문화는 새로운 가치관과 상충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함

▶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특히 '왜 바로 지금 이러한 불만·갈등이 심화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부족함

- 조직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라면 현상은 '합의부 조직 문화의 갈등'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도 실질은 조직 전체의 갈등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 극단적인 확대해석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조직의 위기 진단과 예방을 위해 때로는 **적극적인 분석이 필요함** ⇨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전제로 검토하기로 함
 - 특히 현상이 주로 '합의부 조직 문화의 갈등' 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그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시도함
 -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분과위원회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도 2015. 9. 14. '합의부의 운용' (재판장과 배석의 관계)을 논의 예정



III. 원인 분석

<p>☑ 개요 ⇨ 중요 사법정책 추진기에 법원 조직에 전반적으로 만연한 스트레스와 갈등이 가장 약한 고리인 지방법원 배석판사 계층을 통하여 발현되고 있는 것</p> <p>▶ 근본적 원인 ⇨ 사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중요 사법정책의 중점 추진 과정에서 비롯된 정보·비전 공유 부족으로 인한 오해, 불안감 증폭</p> <p>▶ 현상적 원인 ⇨ 그 과정에서 가장 지위가 불안정하고 피해의식이 큰 지방법원 배석판사 집단이, 가장 전형적인 스트레스 요인인 합의부 조직 체계에 대한 불만을, 익숙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확대 재생산·표출함</p>

1. 근본적 원인

- **현재 법관 사회에서 상고법원 추진 방안을 비롯한 중요 사법정책에 대한 정보접근 부족과 그로 인한 오해·불신이 심각한 정도임**

중요 사법정책	대표적 오해사례
상고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 법관의 승진 적체 해소만을 위한 정책임 - 30기 이하 법관의 상당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과거 고등법원 배석판사보다 더욱 근무 강도가 높은 상고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되어 고생하게 될 것임 - 특히 모든 상고심 판결문이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게 될 것이므로 그 업무 강도는 어마어마할 것임 - 현재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에 올인함으로 인하여 법관의 복지 개선 사업은 모두 중단되었음
사실심 충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과 법관 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사실심 충실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스란히 법관의 희생이 초래됨 - 각종 통계 수치 분석을 통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임 - 대법원은 법관 정원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법조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석판사 보임 기간은 더욱 장기화될 것이고, 특히 기수가 낮아질수록 길어져 이른바 '평생 배석'도 각오해야 할 것임 - 오랜 배석판사 보임 기간을 거쳐봤자 나중에 동년배들이 5년 또는 10년 법조 경력 법관으로 임용되었을 때에 특별히 유리한 처우를 받지 못할 것임
평생법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처우 개선이 없는 가운데 내부 경쟁만 가열될 것임 - 승진하지 못하여 낙오자로 인식되지 않기 위하여 조직에 순응할 수밖에 없음
인사제도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 평정의 원칙·기준에 대한 불신 - 각급법원 내에서 사무분담 결정의 원칙·기준에 대한 불신



- 이러한 오해·불신현상은 부장판사, 단독판사, 배석판사를 막론하고 전 세대의 법관에 공통된 현상임

- 법관 사회 전반의 사법정책에 대한 무관심현상에도 상당 부분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 법관은 사법행정 당국의 정보 공유 노력이 부족했다고 여기고 있음

▣ 특히 극단적이고 선정적인 비관론일수록 더욱 득세하는 형국임

- 또한 자연스레 왜곡·오해는 사법부의 역사·정책·문화 등에 관한 지식이 일천한 젊은 법관, 특히 배석판사들 사이에서 더욱 심각함

- ‘평생 배석’ 등의 낭설이 그러한 예임
- 특히 상고법원 추진에 관해서는 ‘상고법원은 절대악’이라는 식의 극단적인 반대론이 지지세를 넓히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

▣ 미래에 대한 비관론은 법관 스스로의 현재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귀결되고 있음

- 그리고 전반적인 법관 사회의 불안감과 불만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한 고리인 지방법원 배석판사들을 통하여 표출됨

☑ 문제의 심각성

- ▶ 이와 같은 상황은 상고법원 등 중요 사법정책 추진의 결정적 시기에 돌발적인 부정적 변수로 기능하게 될 수 있어 더욱 문제임
 - 최근에도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한 某판사의 코트넷 게시 제언이 언론에 의하여 ‘현직 법관 상고법원안 반대’라는 식으로 매도되고 있음
 - 건전하고 건설적인 관심과 의도에서 출발한 의견 표명이라도 정보 부족과 오해로 말미암아 오히려 정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대법원의 사법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 불신 풍조로 자리 잡게 될 우려도 있음
 - 특히 과거 사법정책에 대한 주요 비판이 단독판사와 소장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한 비교적 이성적인 접근이었던 데에 비하여, 현재에는 배석판사를 중심으로 한 감성적인 접근에 치우치고 있음 ⇨ 무조건적인 무관심·불신·반대가 만연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됨



2. 현상적 원인

가. [약한고리①] 주체 ⇨ 지방법원 배석판사

- 불만은 부장판사, 단독판사, 배석판사를 비롯한 전 세대 법관들에게 공통되어 있으나, 특히 배석판사들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밀접한 이해관계와 직접적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음

주요 사법정책	오해의 대표적인 내용	피해 의식을 가지는 계층
상고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 법관의 승진 적체 해소만을 위한 정책임 - 30기 이하 법관의 상당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과거 고등법원 배석판사보다 더욱 근무 강도가 높은 상고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되어 고생하게 될 것임 - 특히 모든 상고심 판결문이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게 될 것이므로 그 업무 강도는 어마어마할 것임 - 현재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에 올인함으로 인하여 법관의 복지 개선 사업은 모두 중단되었음 	단독판사·배석판사
사실심 충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과 법관 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사실심 충실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스란히 법관의 희생이 초래될 것임 - 각종 통계 수치 분석을 통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임 - 대법원은 법관 정원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부장판사·단독판사 ·배석판사
법조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석판사 보임 기간은 더욱 장기화될 것이고, 특히 기수가 낮아질수록 길어져 이른바 '평생 배석'도 각오해야 할 것임 - 오랜 배석판사 보임 기간을 거쳐봤자 나중에 동년배들이 5년 또는 10년 법조 경력 법관으로 임용되었을 때 특별히 유리한 처우를 받지도 못할 것임 	배석판사
평생법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처우 개선이 없는 가운데 내부 경쟁만 가열될 것임 - 승진하지 못하여 낙오자로 인식되지 않기 위하여 조직에 순응할 수밖에 없음 	부장판사·단독판사 ·배석판사
인사제도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 평정의 원칙·기준에 대한 불신 - 각급법원 내에서 사무분담 결정의 원칙·기준에 대한 불신 	부장판사·단독판사 ·배석판사

- 배석판사 계층은 부장판사와 단독판사 계층에 비하여 이러한 **스트레스의 분출구·해소책도 부족함**

- 결국 사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중요 사법정책의 중점 추진 과정에서 비롯된 정보·비전 공유 부족으로 인한 오해, 불안감은 배석판사 계층에서 가장 누적·응축될 수밖에 없음

☑ 온라인을 통한 정보 확산력

- ▶ 한편, 지방법원 배석판사 계층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 공유·확산 속도가 매우 빠름 ⇨ 불만과 문제 제기가 이를 통하여 빠르게 공유되고 때로는 시너지 효과, 군중심리를 수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나. [약한고리②] 시기 ⇨ **중요 사법정책 중점 추진 + 사망 사고 발생**

▣ **중요 사법정책, 특히 상고법원 추진으로 인하여 **각급 법원 법관들의 소외감도 고조되고 있는 시기임****

- 법관들은 ‘지금은 대법원이 법관 처우 개선에서 아예 손을 뗀 시기’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음

-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상고법원과 사실심 충실화가 법관 처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오해마저 가지고 있음 ⇨ 중요 사법정책 중점 추진이 그 정점에 달할수록 법관 사회의 동요는 더욱 심해질 것임

▣ **특히 지방법원 배석판사들은 ‘처우개선 노력의 지체’를 걱정하고, 더 나아가 ‘정책 자체의 부재’를 의심하기에 이르렀음**

- 특히 최근 로스쿨 출신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 관한 논란 과정은 이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한 번 더 고민하게 하였음 ⇨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아무런 개선이 없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불만을 더욱 적극적으로 외부로 표출하게 하고 있음

☑ Daum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게시판 중 “사시와 로스쿨, 존재에 대한 자각”이라는 글에 달린 댓글 중 일부

- ▶ “30대 후반 기수로서 부품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 ▶ “기록 안 보는 부장님, 계속 위로만 들어오는 신규 법관, 끝이 안 보이는 배석 생활. 솔직히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방문 잠그고 하는 일에 손도 꼼짝 안 하는 부장님 보면 내가 이 짓을 도대체 몇 년이나 더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뭐, 들어오려는 사람 많으니까 불만이면 나가면 되겠조? **아마 행정처나 윗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지금 저희들 기수에 그리 무관심하신 거겠조.** 배석이라 우리의 불만과 고통이 당장의 재판 등 성과와는 아무 관련 없고 새로운 부품이 무한대기 중이니까요.”

▣ **설상가상으로 최근 몇 차례 안타까운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법관 사회의 **심리적 동요**가 심해지게 됨**

- 서울남부지법 이○○ 판사 사망 사고



- 서울중앙지법 일부 판사 말기 폐암, 뇌출혈 등 건강 이상 사례 발생

다. [약한고리③] 조직 ⇨ 합의부 조직

- ▣ 배석판사들이 그 구체적 표출 대상을 '합의부' 또는 '부장판사' 자체로 삼게 되는 이유는 **배석 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불만 때문임

- 이른바 '평생 배석'이 아니더라도 '최소 7년 배석'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배석판사로 하여금 '합의부' 또는 '부장판사' 자체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가지기 어렵게 하고 있음

- ▣ 특히 '합의부' 조직은 **전근대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쉬움**

- 다수 사기업들이 수평적 조직 체계를 갖추고 호칭을 일원화하는 등 조직 문화 개선에 주력하는 데에 비하여 사법부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임

☑ 2015. 8. 17.자 시사위크 "[기업문화의 변신] 자유로운 '호칭'부터 이색적인 '사내 모임'까지... '눈길'"

▶ 신세계그룹은 올해부터 직원 호칭을 '파트너'로 통일했다. 기존 '사원-주임-대리-과장-부장-수석부장' 등 6단계이던 직급 체계를 S4, S3, S2, S1(가칭) 4단계로 축소하고, 직원들의 외부 호칭은 모두 파트너로 통일했다. 파트너라는 호칭 통일은 대외적으로는 상생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내부적으로는 수평적이고 창의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 이 외에도 다음카카오는 전 직원이 영어 이름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 호칭에서 "~님"이라는 표현조차 제거하기 위한 시도임)

- 업무공동체 단위로서 뿐만 아니라 생활공동체 단위로서 기능하고 있는 '합의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함

- ▣ 다만 **현 상황에 대한 개선 부담을 '부장판사'라는 구성원에게만 돌리는 것은 무리일 수 있음**

- 현재 부장판사들도 '신세대 법관'과 함께 바람직한 재판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이제는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시기



-
- 그와 함께 ‘부장판사 리더십(2014년 정책연구용역)’ 교육으로 보완할 필요



IV. 대응 방안

- ☑ 개요 ⇨ **근본적 원인과 현상적 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두 실시함**
- ▶ **현상적 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 ⇨ **합의부 중심의 조직 문화 리빌딩**
 - ① 합의부의 **생활공동체** 기능 재편
 - ② **자율출퇴근제** 실시를 통한 **스마트한 합의부 근무 환경** 모색
 - ▶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 ⇨ **중요 사법정책 비전·정보 공유 강화**
 - ① 중요 사법정책에 대한 **적극적 정보 전달 기회** 정례화
 - ② (하반기에 시범 실시 가능한 아이টে을 포함한) **법관 복지 개선 마스터플랜** 공표
 - ③ **법원문화개선TFT** 가동

1. 합의부의 생활공동체 기능 재편

가. 개요

- ▣ **1개의 합의부가 폐쇄적 생활공동체가 되는 것을 지양함**
 - 특히 이른바 '밥조' 재편성을 통하여 좀 더 개방적인 생활공동체 단위로 확대·전환을 꾀함

나. 문제의식

- ▣ **합의부 조직이 수직적 갈등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된 이유**
 - ① 구성원 간에 직급 차이가 심함 ⇨ 갈등 발생의 소지가 큼
 - 신구 세대 간 차이도 쉽게 발생할 수 있음
 - ② 구성원의 숫자가 매우 소수임 ⇨ 갈등 해소의 여지가 작음
 - 특히 과거보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을 모두 포용하기 어려움
- ▣ **하지만 합의부는 바람직한 재판을 위한 이상적인 업무 단위로서 절대 해체되거나 형해화되어서는 안 됨**
 - 형태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최근 대다수 사기업에서 부서제 조직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팀제 조직에 가까움



- 이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민주적이고 소통 친화적인 조직일 수 있음
-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합의제 재판을 위해서 합의부의 업무공동체 기능은 잘 유지·보존되어야 함
- ▣ 합의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폐쇄적인 합의부 조직을 **좀 더 개방적인 조직으로 과감히 재편해야 함**
- 발전적 해체에 가까운 기능 재편만이 오히려 합의부 중심의 조직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길임 ⇨ 업무공동체로서의 재판부를 해체·재편성할 수는 없음. 따라서 생활공동체로서의 재판부를 재편하는 방법을 모색

다. 구체적 내용

- ▣ **2~3개의 합의부가 하나의 생활공동체의 단위가 되도록 재편성**
- 재판 요일 또는 사무 분담이 유사한 2~3개 재판부가 하나의 '밥조'를 이루도록 유도함
- 다만, 전면적으로 식사를 자유롭게 하는 것(합의부가 전혀 식사를 같이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은 합의부 조직의 형해화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지양
- 실제로 몇몇 지방법원 지원 급의 법원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합의부 중심 조직문화 개선에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 방안임
- ▣ **각급 법원 법원장 또는 수석부장이 적극적으로 권유·유도함**
- 초기에는 부장판사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음 ⇨ 적극적으로 부장판사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 재판부 사이에 시간·장소를 맞추어야 하는 불편, 부장판사들의 개성 차이 등으로 인하여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음 ⇨ '단독판사 밥조의 확장 형태'로 접근하여 고정관념·인식 개선

☑ 지나치게 사소한 문제에 대한 사법행정의 개입이 아닌지?

▶ 지방법원 배석판사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음 ⇨ 배석판사의 눈



높이에서 사안을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간의 문제이므로 적극적인 유도·설득 없이는 쉽게 변화하기 어려움

▶ [유사 사례] 최근 배석판사의 사건 메모 작성·납품 문제

- 대법원장님께서 직접 적극적인 견해를 수차례 의견·관심 표명[21기 부장판사들에 대한 연임법관 간담회 시 문제 제기·권고, 각급 법원 업무보고 시 재당부·재확인] ⇨ 관행 개선 ⇨ 각급 법원 법관들로부터 큰 호응

- 오래된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오히려 탑다운(top down) 방식의 적극적 개입도 필요함 시사

● 법관들의 '생활', '문화'와 관련한 문제 ⇨ ① 초기에는 '일부 법원장의 자발적 제안'의 형식을 빌려 몇몇 법원에서 시도한 후 ② 반응·효과가 좋을 경우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함

- 반응·효과가 좋지 않을 경우 폐기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유보

- 반응·효과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히 배석판사들로부터 기대되는 아래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 ⇨ 긍정적인 경우에는 중앙 사법행정 당국이 공식적으로 적극적 개입·유도

라. 기대 효과

■ 좀 더 수평적이고 넓은 범위의 소통을 이룰 수 있어 합의부에 내재된 갈등·긴장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음

● 특히 다수의 재판부가 소통하면 서로간의 근무 여건의 공공연한 비교를 통하여 배석판사 근무 여건의 상향평준화도 꾀할 수 있음

- 부수적으로는 배석판사들이 식사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개인적 약속 등에 활용할 수도 있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임

■ 실시 초기에는 부장판사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으나 부장판사의 입장에서라도 여러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

● 합의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장판사들이 투여하는 각종 노력·부담도 절약



2. 자율출퇴근제 실시를 통한 스마트한 합의부 근무 환경 모색

가. 개요

▣ 자율출퇴근제를 합의부 운영에 시범 실시

- 자율출퇴근제(=유연근무제, 탄력적출퇴근제)를 합의부 운영에 도입하여 배석판사의 업무상 스트레스 저감을 꾀함

나. 문제의식

▣ 업무 공동체로서의 합의부 조직의 본질은 '팀 형태의 공동 작업'이지만, 불필요한 부담은 최소화하는 스마트 근무 환경 모색이 필요

- 특히 배석판사들의 불만 중 상당수는 '무의미한 야근'임 ⇨ 보다 적극·긍정적으로 근무·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특히 배석판사들에게 조기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즉시 시범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스마트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한 여러 정책 중 자율출퇴근 제도가 조기에 시범 실시에 가장 적당함
 - 법원직원의 경우에는 민원 응대 필요성이 크므로 문제 소지가 일부 있으나, 법관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작용도 덜함
 - [cf①] 시간제 근무(1일 8시간이 아닌 일부 시간만 근무하는 방식, 일종의 부분 휴직 제도) ⇨ 인력 수급에 관한 치밀한 사전 시뮬레이션 필요
 - [cf②] 원격 근무(이른바 스마트 오피스 제도) ⇨ 물적 설비 완비와 부작용 여부에 관한 사전 검토·준비 필요
- 이미 다수 사기업, 행정자치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부작용이나 외부 비판의 우려가 적음

☑ 2015. 4. 10.자 서울신문 "행자부, 20일부터 자율출퇴근제 시범 실시"

▶ "행정자치부는 출퇴근 시간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출퇴근제를 20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도 근무시간 선택제가 담겨 있지만, 지금까지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되, 공무원이 신청하면 유연근무를 허가하고 이를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행자부는 우선 기획조정실 소속 창조행정담당관실과 정보통계담당관실,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다른 부서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 한편, 자율출퇴근제는 이미 대세 ⇨ 너무 늦지 않은 실시도 중요
 - 복지정책의 특성상 상대적 우월감 확보가 중요
 - 뒤늦은 실시는 오히려 다른 명분을 들어 끝까지 실시하지 않는 것만 못함

다. 구체적 내용

▣ 하반기 중 **임신 법관 근무 재판부**부터 시범 실시

- 각 지방법원 별로 1개 재판부에 시범 실시 ⇨ 조기 홍보 효과 극대화, 특히 여성 법관에 대한 홍보 효과가 상당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가동 중인 TFT에서 검토
 - [합의부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방안(예시)] 매일 일정한 시간(ex. 오전 10시~오후 4시) 또는 합의부에서 합의나 판결문 초안 수정에 필요한 특정한 시간을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재실 근무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확보 가능

▣ 후술하는 **법관 복지 개선 마스터플랜**과 함께 묶어 적극 홍보

라. 기대 효과

▣ 시범 실시만으로도 배석판사들에게 주는 **긍정적 메시지와 비전**은 상당할 것으로 보임

- 스마트 근무 환경 추진을 포함한 복지 개선 마스터플랜을 제시

▣ 합의부 근무로 인한 실질적 스트레스를 저감하여 **합의부 근무 장기화에 대한 거부감**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여성 배석판사들의 육아·가사 고민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음



3. 중요 사법정책에 대한 적극적 정보 전달 기회 정례화

가. 개요

▣ 중요 사법정책에 관하여 각급 법원 법관들과 **정확한 정보 공유**

- 법관사회 전반에 만연한 오해에 관한 적극적 해소 추진

나. 문제의식

▣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지만 경시되어서는 아니 됨

- 여러 갈등에 대한 근본적 방안임 ⇨ 최우선순위로 추진되어야 함

▣ 최근 실시한 상고법원 순회 간담회가 큰 호응을 받음

-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냄
 - 유의미한 정보 습득 기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이와 같은 적극적 자세·태도 자체를 높이 평가하였다고 함
 - 권역별로 실시함으로써 좀 더 많은 법관들의 쉬운 참여 기회 제공되지 못하였던 점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지적됨

☑ 과거에도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왔던 방식

- ▶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 민사재판에서 구술심리주의 도입 시 ⇨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 심의관들이 각급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제도의 취지, 개요 등을 설명하고 의문점, 문제점을 직접 청취한 바 있음
 - 최근 법정녹음제도 실시를 앞두고도 마찬가지임
- ▶ 특히 이와 같은 방식은 온라인상의 서면 공지 등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제도의 이면적 취지, 법관 처우에 대한 실질적 개선 효과, 조직과 개인이 거둘 수 있는 득과 실 등에 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임

다. 구체적 내용

▣ 간담회 방식의 정보 전달 기회의 **정례적 실시**

- ‘단발성 간담회’와 ‘정례적 간담회’는 법관 사회에 제시하는 비전·이미지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것임



- 향후에도 정책 내용과 방향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것임을 천명하는 의미가 있음
- 특히 대법원장님 임기 후반기가 될수록 법관 사회와의 긴밀한 스킨십 유지는 필수적임
- 사법정책 당국이 법관 사회와 유리되지 않도록 언론과 소통 창구를 유지·확보할 필요

■ **특히 주요 인사정책에 관한 적극적인 온라인 설명 필요**

- 지방법원 배석판사들의 최대관심사인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의 인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설명 필요
- 최근 로스쿨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 관한 안내 말씀과 같은 형태로 주요 오해 내용에 관한 Q&A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상고법원에 관하여는 집중적·지속적인 오프라인 설명 필요**

- 최근 각급 법원 법관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를 통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지속적인 설명 필요
- (역량이 허용한다면) 각 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일과 시간 중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있음
- 특히 상고법원에 관하여 반대 입장인 법관들의 경우 권역별 간담회에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참가하려 들지 않음
-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라. 기대 효과

■ **중요 사법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 오해 해소**

■ **중점 추진 시기에 원활한 정책 추진·입법 활동 가능**

- 정보 소외감으로 인한 맹목적인 반대·무관심 계층을 최대한 감축할 수 있을 것임



4. [하반기에 시범 실시 가능한 아이টে을 포함한] 법관 복지 개선 마스터플랜 공표

가. 개요

- ▣ 법관에 대한 복지 개선 마스터플랜을 **코트넷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표
 - 올 하반기에 실시 가능한 아이টে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가시적인 실천 의지를 표명하여야 함

나. 문제의식

- ▣ 현재 법관들의 가장 중요한 불만의 원인은 법관 처우 개선이 뒷전에 밀려나 있다는 오해임 ⇨ 법관 복지 개선에 관한 **강력한 정책 추진·실천 의지**를 **實證**할 수 있는 **카드 제시**가 필요한 시점임
 - 반드시 장래에 준비하고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최근 1~2년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정책도 포함시켜 오해를 불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내용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 있음

다. 구체적 내용

- ▣ 올 하반기에 즉각 실시 가능한 아이টে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미 실시된 것과 앞으로 실시될 것을 마스터플랜 형식으로 공표
 - 즉각 실시 가능한 아이টে은 앞서 언급한 자율출퇴근제 시범 실시가 적당함

라. 기대 효과

- ▣ 법관 복지 개선 **정책의 공백**에 대한 불만·불안감 해소



5. 법원문화개선TFT 가동

가. 개요

▣ **각급 법원 법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함께 참여하는 TFT 가동**

- 법관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 입안 추진

나. 문제의식

▣ **지난 7월부터 제3기 법원문화연구반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파급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음** ⇨ 최근 이○○ 판사 사망 사고 발생 이후 법관 사회의 심리적 동요를 다독일 좀 더 **적극적 제스처** 필요

- 2013년 법원직원 사망 사고 발생 직후 근무환경개선위원회를 개최한 경험 ⇨ 적극적인 여론 수습을 도모

다. 구체적 내용

▣ **구성**

- 법원행정처 심의관, 각급 법원 단독·배석판사, 법원문화연구반원 등
- 특히 각급 법원 법관은 해당 법원 법관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여론 형성력이 강한 인사로 선정하여 TFT 논의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법관은 사건 배당에서 배려하는 등 지원 조치를 취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함

▣ **TFT 주요 활동**

- [1단계] 개선 의견에 대한 검토 보고 및 토론
 - 담당 실국별 주무 심의관 해당 과제 검토 ⇨ 과제성격에 따라 관련 실국과 협의 및 보완
 - TFT 발제 및 토론 ⇨ TFT 1차 개선 방안 수립



- [2단계] 법원 내부 의견 수렴

- 설문조사 등을 통해 법원 내부 의견 수렴 및 피드백

- [3단계] 정책 추진 로드맵 및 세부 시행 방안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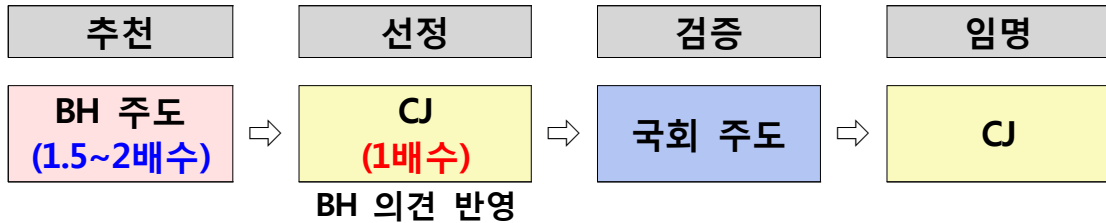
- 최종 제도 개선 방안 도출

라. 기대 효과

- ▣ **법관 사회의 심리적 동요 방지·안정 확보 [끝]**

상고법원 판사 임명절차 추가 검토

1. 현재 대안



▣ 특징

- 추천위 : BH 주도로 1.5~2배수 추천 → 행정부 관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 총 9명 : [법조 3류] + [BH 지명 3명] + [학식·덕망 3명]
- 선정 : 후보자 중 1배수를 정하여 검증위원회 회부
 - BH 관여도를 '임명' 유사 수준으로 향상
 - (예시) 정부 등 각계의 의견을 들어 선정
- 검증 : 국회 주도로 최종후보자 검증 → 국회 관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2. 추가 대안

가. 문제의식

1) 헌법상 CJ의 임명권 침해 방지는 필요조건임

2) 현재 마련된 대안적 절차 중 임명권의 핵심은 '선정'임

▣ '선정' 과정의 협의 등 절차 마련 시, 헌법상 임명권 침해 논란 불가피

▣ '선정' 과정의 절차를 추상화할 경우, BH는 불만족 또는 불안함

3) BH에서 볼 때 '선정' 포기로 인식되는 것이 필요

▣ '외부에서 추천·검증한 자에 대해 임명만 하겠다.'는 외관 창출 필요

▣ 외국의 '임명권'도 실질적으로는 추천·검증된 인사를 확인하는 의미

나. 선정절차 폐지

■ 기본구조



▶ 천거

▶ 추천

- 대법관 추천위에서 **CJ 제시권**의 기본구조 차용 → **차이는 1배수 추천**
 - CJ가 제시하는 1~1.5배수 우선 심사 + 나머지 후보군 추가 심사
 - 후보자 1배수 추천 (실질은 선정)

▶ 검증

▶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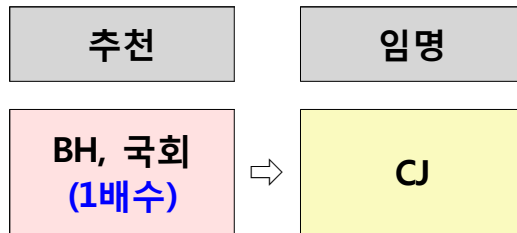
- CJ는 추천명단 존중 → 부적격자 거부 가능 (※ 하자 없으면, 그대로 임명)

우려사항	대책
BH 관여도 낮음	① BH 관여도는 4/9 ② CJ 관여도와 동일 ③ 변협이 캐스팅 보트 → CJ 측 아님
BH 결정권 없음	① 추천위 구성은 '홀수'가 바람직 ② 법조 3륜 외 나머지 '짝수'여야 함 ③ BH 측과 나머지 관여자가 동수여야 '짝수' 가능 ④ 관여도 4/9는 최다 비율 ⑤ 과반수 관여자는 아무도 없음
추천위 내에서 처장의 부담 가중	'CJ 제시권'으로 부담 경감 가능
CJ 제시권 유지 여부 (※ CJ 제시권 포기)	현직 법관 '천거' 배제하므로, 필요 (※ 현직 법관 '천거' 허용)
CJ 인사권 대폭 축소	다수의 현직 법관 중 임명하므로, 중요하지 않음

BH 관여도 대폭 강화	대부분 현직 법관이어서, 영향력 미미
1배수 추천 후 검증에서 낙마하는 경우	추가 추천절차 진행하여 임명 가능
1배수 초과 추천 필요 여부	BH의 결정권 보장 외관상 1배수 불가피
부적격자 또는 부적절한 대상자 추천	검증에서 배제 또는 임명 거부 가능

다. 예비안

■ 기본구조



▶ 천거

▶ 추천

- 구성(9명) : [법조 3명] + [BH 지명 2명] + [국회 지명 2명] + [학식·덕망 2명]
- CJ가 제시 대상자 우선 심사 + 나머지 후보군 추가 심사
 - 후보자 1배수 추천 (실질은 선정)

▶ 임명

- CJ는 거부 가능

우려사항	대책
BH 결정권 없음	① BH 관여도는 4/9로 최대 비율 ② CJ 관여도는 3/9에 불과 ∴ BH가 사실상 임명권자임
국회 포함 시 '나눠 먹기식' 인사 가능	① 다수의 현직 법관 중 임명하므로, 중요하지 않음 ② 여당 4명, 야당 1명으로 비율 차이가 커서 '나눠 먹기식' 인사 어려움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 방향』 이행방안

2015. 9. 9.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처장님 9. 2.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 방향' 코트넷 공지

- 최근 일선 법관들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불만 고조
 - ①상고법원 총력추진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피로감 내지 반감
 - ②언론의 연이은 사법부 비판 기사 및 칼럼의 영향
 - ③경력법관 임용 관련 논란 등 인사 변화 관련 정보 소외감
 - ④배석기간 장기화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 ⑤과중한 업무량에 대하여 행정처가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
 - ⑥故 이○○ 판사 사망으로 불만 분위기 더욱 악화
- ※ 최근 3개월간 법관들 여론에 영향 미친 주요 사건과 법관들 반응 별지 참조
- ⇨ 법관들의 관심이 가장 높고 민감한 분야인 인사제도 전반을 망라한 상세한 설명으로 오해 불식 및 소통 시도
 - 8월말 이루어진 복지 관련 종합 공지에 이은 내부 소통 강화의 일환

- ▣ ①공지글에 대한 법관들의 반응을 살핀 후, ②공지글에서 언급된 개선 방향에 따른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함

2. 공지글에 대한 법관들 반응

▣ 일선 법관 반응 확인 방법

- ①법관 전용 인터넷 익명카페 ⇨ 진솔한 목소리 등 정확한 여론 수렴
- ②각급 법원 기획법관을 통한 여론 취합 ⇨ 기수·경력 등을 고려한 현황 분석



- ③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수집 ⇨ 문제의식에 기반한 현황 파악
- ④유연근무제 설문조사 호응도 ⇨ 전국적인 통계적 분석 가능

■ 반응 ⇨ 상당히 긍정적

- 민감한 분야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궁금증이 일부 해소됨**
- 인사제도는 정답이 없는 분야인데, 일선 법관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노력 자체가 행정처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바람직함
-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설명하는 것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음
- 유연근무제 설문조사에 불과 이틀만에 전체 법관의 약 1/3인 900여 명이 응할 정도로 **관심과 호응이 높음**
- 단, ①여전히 코트넷 공지에 무관심한 법관 상당수 있고, ②공지를 읽은 경우에도 워낙 주제가 다양하고 민감한 분야가 많아서인지 법관들 사이에서 이에 관한 **추가 논의 내지 토론은 그다지 많지 않았음**

■ '탄력근무제'에 관하여 익명카페에서 활발한 토론 이루어짐

☑ 법관 인터넷 익명카페 9. 4.자 탄력근무제 관련 게시물

- ▶ '설문하면서 처음엔 와~ 이렇게 있으면 진짜 좋겠다~ 하다가, 과연 시행해도 불이익이 염려되어 신청하게 될지는 강한 의문이 든다'는 본글에 대하여
 - 예단을 가질 필요 없고, 설문에 많이 응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좋은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는 반응 대다수**
 - (육아휴직 등과 마찬가지로) 제도 초기에는 이용이 활발하지 않더라도 결국 잘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
 - 요즘은 판사들 상당수가 **'승포판(승진을 포기한 판사)'**이므로, 탄력근무제 시행되면 **이용 안할 이유 없을 것**이라는 예측
 - 본글 작성자가 '육아휴직 사용 직후 국외연수 선발이 안되는 불이익을 입는 것에 비추어 탄력근무제도 사용시 불이익 우려된다'는 댓글을 추가하였으나, '육아휴직 사용 직후 아님 1년 경과 후에는 정상 선발된다'고 반박하는 글 다수
- ▶ 최근 법원행정처의 일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비판·냉소적인 글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위 카페 분위기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임

■ ⇨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을 통해 일선 법관들의 신뢰 공고히 할 필요



3. 향후 이행방안

가. 개관

정책방향	최근 성과	향후 이행방안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정기인사	중장기 검토	
법관증원	(사물관할 조정 외) 판사정원법 개정	적정인원 연구용역	용역 세부주제 검토			연구용역 진행			적정 정원 개정 추진	
법관역량 심판집중	①공시사건 독촉처리 ②참여관의 녹취록검토 등	(사법보좌관 직무 확대 등 관련입법 지속추진 외) 전자소송 부담경감	TF논의 과제 발굴 및 사법정보화 TF결과 이행방안 수립			새로운 근무형태 도입				
배석·부장 보임형평	①경력상향 향소부, ②경력법관 배석기간 4년 등	순환근무 관련 의견수렴 후 기준 마련	설문조사예규개정			법원장 회의 공유		사무분담 반영		
모성 및 육아 지원	보육시설 대거 확충 등	유연근무제	설문조사 시차출근 시범법원			법원장 회의 공유 검토		유연근무 실시		
		임신법관 배당배려 등				예규개정		배당 반영		
		휴직 연속사용 기준 마련	기준마련 투명 공지							
연임법관 사법연구	도입 검토	공지·의견수렴 후 시행	상고법원 입법 완료			의견수렴		시행		
전담법관 방향설정	중액 및 고액단독 확대	성과분석 및 방향설정	성과분석						장기방향 설정	
고법판사 운영	성과분석	일반부 비중 확대	운영방안 검토 투명 공지			시행				
신임법관 임용개선	다양한 평가기법 마련	심사총실화 및 임용절차개선위	총실화방안 검토					2016년 임용절차 개선 반영		
		법전문 출신 법관 인사기준	기준 검토			공지		시행		
국외연수 제도개선	1법관1국외연수 국외파견확대	법조일원화 연수제도 재편	국외연수제도 내부 전면 재검토					의견수렴 또는 외부연구반		



나. 이행방안

1) 법관 적정인원에 관한 연구용역 진행

■ 개요

- 사법정책심의관실, 2013년 ‘적정 판사 정원에 대한 정책 연구’ 정책 연구용역 진행 ⇨ 2014년 ‘각급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설득논리 개발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함
- 현재 1심 접수사건수 정체 상태 ⇨ 충실한 심리와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관 적정인원과 적정 업무량, 지속적 법관증원에 따른 효과, 다양한 신분의 법관제도 도입가능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함
 - 예컨대, ①법관증원에 따라 현재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신분과 대우의 유지 가능 여부 ②치안판사나 파산판사 등의 도입가능성 등과 같은 근본 쟁점에 대한 연구검토 포함되어야 함

■ 담당실국: 사법정책실(이○○ 심의관)

■ 향후 추진계획

- 2015. 9.부터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연구용역 세부주제, 업무량 분석 방법론 등 검토 시작 ⇨ 2016. 1. 연구용역 의뢰

2) 전자소송 관련 법관 업무부담 경감 방안

■ 개요

- ①전자소송 환경에서 법관에게 부하가 걸리는 형식적이고 단순 확 인적인 업무를 이관 또는 생략하는 방안 검토
- ②종이·결재에 기초한 기존 재판업무시스템의 재설계와 그에 적합한 새로운 근무여건의 구축 검토
 - 최근 미국에서 추진 중인 전자소송 구조개혁의 진행상황 벤치마킹 필요



- ③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과 함께 전자소송 환경에 적합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업무간소화 검토

▣ 담당실국: 사법지원실(민사 이○○, 형사 한○○ 심의관) 전산정보관리국(이○○ 심의관)

▣ 향후 추진계획

- 2015. 10.부터 업무이관 가능 항목과 과제 발굴 검토 착수
- 현재 활동 중인 사법정보화 TF 2015. 11.경 종료 예정 ⇨ 연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계획 수립

3) 배석판사 근무기간 합리화 및 합의부장 순환근무 관련

▣ 개요

- 배석과 단독, 단독부장과 합의부장 순환근무와 관련하여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참조하여 최종 기준 완성

▣ 담당실국: 인사총괄실(호○○ 심의관), 사법정책실(이○○ 심의관)

▣ 향후 추진계획

- 유연근무제 설문조사 종료 직후인 9. 11.경 순환근무 관련 대상 법관 상대 설문조사 실시
 - 2015. 6. 구성된 순환근무 연구반을 통해 이행방안 검토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
- 2015. 9. 말까지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순환근무의 내용을 구체화 ⇨ 정책결정 완료 후 관련 내용을 공지
- 2015. 10. 배석판사 근무기간, 단독부장 근무기간의 정리·분류 작업 ⇨ 필요 시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
- 2015. 12.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구체적 기준 논의 및 공유

4) 유연근무제 추진



■ 개요

- 유연근무제의 방안으로서 시차출퇴근 제도, 스마트 워크, 시간제 근무 등을 검토 예정

■ 담당실국: 기획조정실(조○○ 심의관)

■ 향후 추진계획

- 법관들 대상 설문조사 시행 중 ⇨ 결과를 바탕으로 9. 25. 복지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정책 의결
- 10월경 시범법원을 지정하여 시차출퇴근 제도 시범실시
- 시범실시 결과 분석 및 보완대책 수립 후 12월 법원장 회의 등을 통하여 결과 공유하고 전국 법원 확대 실시 여부 정책결정 ⇨ 법원 구성원 공지를 거쳐 이르면 2016년 정기인사 이후 시간제 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전반적 실시 추진

5) 임신 법관에 대한 사건배당 등 배려

■ 개요

- 임신한 여성 법관에 대한 실질적 모성보호 필요성 ⇨ 실질적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
 - 현재 출산 예정인 법관에 대하여는 사건배당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임신 초기 법관에 대한 혜택이 없고 배당감축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담당실국: 사법정책실(김○○ 심의관)

■ 향후 추진계획

- 2015. 12.부터 검토 진행하여 2016. 1.경 정책결정
 - 소규모 지원 등에서 다른 재판부에 미치는 사건부담 등의 해결방안 검토
 - 법원 일반직 여성 공무원에 대한 배려와의 균형 고려



- 검토 진행 상황에 따라 12월 전국 법원장 회의 등을 통하여 구체적 기준 논의 ⇨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 을 거쳐 2016. 2. 정기인사 이후 시행

6) 각종 휴직 및 해외연수 관련 기준 정립

■ 개요

- 육아휴직과 배우자동반휴직, 연수휴직 등을 연이어 사용하거나 외국 체류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재차 해외연수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급증하고 있음 ⇨ 대처방안 마련 필요

■ 담당실국: 인사총괄심의관실(호○○ 심의관)

■ 향후 추진계획

- 2015. 10.경까지 관련 기준 정립 완료
- 2015. 11.경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기준을 일선 법관들에게 투명하게 공지 ⇨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7) 전담법관 성과분석

■ 개요

- 기존 소액전담법관에서 2015년 중액·고액 전담법관이 최초로 임용 ⇨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2013~2014년에 사법지원실에서 성과분석 실시 ⇨ 그 결과 소액 전담법관을 집중심리재판부 형태로 운용할 경우 다양한 장점이 확인되었음

■ 담당실국: 사법지원실(김○○ 심의관)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11월 내지 12월, 올해 임용된 중액·고액 전담법관을 중심으로 전담법관의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 실시
- 통계적 분석 및 각종 면담조사 등 정성적 분석을 결합함



- 전담법관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인사총괄실에서 전담법관 제도의 장기적 운용 방향을 설정함

8) 법관인사 이원화 이행방안

■ 개요

- 고법판사의 보임, 전보, 고법부장 보임 등 법관인사 이원화 관련 인사집행방안을 검토함

■ 담당실국: 인사총괄심의관실(호○○ 심의관)

■ 향후 추진계획

- 기존의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2015. 9.부터 주요 사항에 관한 검토 및 정책결정 진행
 - 각 고등법원별 대등재판부 적정 규모 및 고법판사 보임 규모
 - 23기와 24기의 고법부장 보임 방안
 - 고법판사의 지방권 전보 방안
 - 고법판사의 각종 특수보직 보임 방안
 - 고법판사의 지방법원 복귀 관련 기준, 운용방안
 - 장단기 이행방안
- 법관들에 대한 공지 (11월 말 이전)
 - 주요 사항 중 투명한 기준 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관들 상대 공지

9) 임용심사의 충실화

■ 개요

- 현재의 기록작성형·면접형 실무능력평가의 틀을 뛰어넘어, 지원자의 법조경력에 맞춰 실무능력과 품성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마련



▣ 담당실국: 인사총괄심의관실(노○○ 심의관)

▣ 향후 추진계획

- 집중 실무능력평가 및 인성역량평가 면접의 도입 검토
 - 상당한 시간에 걸쳐 지원자가 면접위원과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상호 질문답변을 교환하는 형태의 심사 도입 검토 ⇨ 실무능력 + 의사전달능력 및 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법조경력에 맞는 면접위원, 논의 주제를 선정
 - 신입법관 연수의 성과도 참고하여 경력법관 선발에 가장 적절한 평가방식 및 기준 모색
 - 9월부터 장단점 및 구체적 실행방안 검토 ⇨ 12월까지 정책결정 ⇨ 2016년 법조경력자 임용 절차에서부터 적용
- 법관임용절차개선위원회 구성
 - 임용절차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외부 세력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임
 - 10월 경 구성 ⇨ 12월까지 2016년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을 논의
 - 2016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임용절차의 개선을 논의
- 로스쿨별 학력격차를 재판연구원, 법관임용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민·형사재판실무 성적, 변호사시험 성적, 기존 임용결과 등 활용
- 심사기준 등 정보 공개 방안
 - 2016년 법관 임용 관련 홈페이지 구축을 목표로 기초검토 중 ⇨ 홈페이지를 통한 심사기준 등 정보 공개

1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관 인사기준 정립

▣ 개요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관에 대하여 단독판사나 합의부장 보임기준, 행사 의전 순위, 합의부 좌·우배석 기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담당실국: 인사총괄심의관실(호○○ 심의관)**

▣ **향후 추진계획**

- 2015. 10.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관의 인사기준 및 서열에 관한 검토 완결
- 결정된 인사기준을 모든 법관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 ⇨ 2016. 2.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관의 배치 시부터 기준 적용

11) 국외연수 제도 개선

▣ **개요**

- 법조일원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외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파견 시기와 기간 등이 전면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담당실국: 기획조정실(박○○ 기획조정심의관, 김○○ 국제심의관), 국제사법정책실(이○○ 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실(노○○ 심의관)**

▣ **향후 추진 계획**

- 단기과제 ⇨ 2015. 10.까지 2017년 국외연수 선발 대상에 39기 단기 법조경력자(법무관 출신 포함)를 포함시킬 것인지 정책결정
 - 종래 기준에 따르면 2017년 국외연수법관의 대상 기수는 즉시 임용법관의 경우 36~39기,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경우 34~36기 ⇨ 39기 법무관들은 단기법조경력법관의 적용을 받은 첫 세대인바, 즉시 임용법관에 준하여 취급할 것인지,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으로 취급할 것인지 검토 필요
- 2015. 10. 월부터 국외연수제도 전면 검토 착수 ⇨ 현 제도의 단기적 개선방안은 물론 장기적·전면적 재편에 관한 검토
- ⇨ 2016년 상반기까지 내부 검토를 마치고, 적절한 형태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거나 외부 연구반을 운용 ⇨ 개편방안 최종 확정



다. 주기적 점검 방안

- 인사분야 제도개선의 특성과 어려움을 고려할 때 '매월 점검회의'와 같은 기계적인 점검방안은 비효율적일 수 있음 ⇨ 필요한 적기에 맞추어 점검 일정 수립
- ①11월 하순경 법원장회의(12. 4.) 자료집 작성 과정에서 1차 점검
 - 기획1심의관이 담당실국의 추진경과 및 성과를 종합하여 차장에게 보고
 - 법원장회의에서 논의 및 공유가 필요한 항목은 법원장회의 이전에 검토 및 정책결정 완료될 수 있도록 점검 ⇨ ①배석판사 근무기간 합리화 및 합의부장 순환근무 기준 ②유연근무제 ③임신법관 관련 배당기준 등
- ②2월 정기인사 전인 1월 하순경 2차 종합 점검
 - 대부분의 인사제도 개선안이 2016년 정기인사 이후 시행되므로, 종합점검 필요



별지 최근 3개월간 사법부 주요 현안 및 이에 대한 법관들의 반응

- ▶ 5. 27. 경력법관 선발시 국정원 신원조사 파문 ⇨ 참담함. 행정처가 면접 통한 사상검증 목인 의심(SBS 취재파일 박○○ 관련) ⇨ 6. 3. 법원행정처 공지글에 대하여 미흡 vs. 늦었지만 다행으로 여론 갈림
- ▶ 6. 20. '귀족판사의 시대가 왔다'(경향 이○○) ⇨ 로스쿨 출신 법관 선발과정 및 8개월 연수 등에 30 후반 기수 법관들 강한 반감, 그 외 기수도 법관 임용 방식 변경 관련 정보 소외감 ⇨ 그 후 행정처 Q&A 등 공지글에도 불구하고 반발 기류 상당함, 30 후반 기수 법관들의 배석기간 장기화, 업무량 과중에 대한 불만 등과 결합하여 표출되기 때문임 ⇨ 7. 1. 신임 법관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고발, 7. 12. 변호사 1천 여명의 사퇴 촉구 광고 등으로 여진 계속
- ▶ 7. 7.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사법제도연구 소모임' 결성 제안 ⇨ 현재의 사법 행정(내용 및 주체 등)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공개적 활동 시도
- ▶ 7. 16. 원세훈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았다는 비판 기사
+ 8. 5. '욕망의 대법원, 낯뜨거운 상고법원'(SBS 취재파일 권○○ 기자) ⇨ 상고 법원 총력추진과 관련하여 누적된 불만 내지 우려가 위 기사를 계기로 대거 표출. 상고법원을 위해 법원이 포기 또는 양보하는 것이 많다는 인식. 입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 등에 로비함으로써 법원의 위상이 낮아지고 비판을 자초했다는 인식. 상고법원에 우호적인 법관들에게는 상고법원 통과가 어렵다는 불안감.
- ▶ 8. 7. 故 이○○ 판사 사망 ⇨ 과중한 업무현실, 통계 압박 등에 대한 불만 폭발. 행정처가 일선 법관의 업무환경 개선보다 상고법원에만 올인한다는 비판적 인식
- ▶ 8. 8.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내부 논의 관련 중앙일보 박○○ 논설위원 칼럼 ⇨ 대법원장 인사권, 법관 관료화 등 관련 논의 촉발 ⇨ 인사총괄실의 공지글
- ▶ 8. 9. 사법부 신뢰도 콜롬비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 ⇨ 사법정책실의 공지글
- ▶ 8. 11. 차○○ 판사 민사재판커뮤니티에 법관 증원 주장하면서 과로, 통계 등 언급 ⇨ 코트넷 게시판에서 실명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 공간에서는 업무량 과다, 법관 증원 미흡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짐 ⇨ 통계 압박 방지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논의 활발하고, '집단적 사건적체 결의' 등의 제안도 있음
- ▶ 8. 15. 어느 여성판사 죽음에 관한 보고서(경향 이○○) + 같은 날 서○○ 연 임탈락 판결과 맞물려 평정, 업무량 등에 대한 비판
- ▶ 8. 19. 대한변협의 상고법원 반대 브로셔 ⇨ 잘만들었다. 법원은 반박못하나
- ▶ 8. 20. 한명숙 전원합의체 선고 ⇨ 정치적 거래 등 비판 기사에 자괴감
- ▶ 8. 21. 전 대법관 아들 초임지 특혜 의혹 기사 ⇨ 사법신뢰 저하의 대표 사례다
- ▶ 8. 26. 서울중앙 연고사건 재배당 관련 형사수석부장의 전화 논란 ⇨ 재배당 제도 자체 및 전화의 적절성 찬반 논란
- ▶ 8. 31. 국선변호비용 지급 지체 관련 ⇨ 상고법원 홍보비는 있으면서 국선변호비 미지급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과 예산 부족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 충돌

연내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강화 방안

1. 취지

- 상고제도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므로, 제도 개선은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바탕되어야 함
- 상고제도 개선은 이미 오랜 기간 수차례 논의되었으나 번번이 충분한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결론 도출에 실패하였음 ⇒ 더 이상 상고제도 개선을 미룰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으므로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논의를 매듭짓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론형성에 영향력이 큰 언론을 통한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함
-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최고의 언론사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쟁점 부각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하므로, 상고제도 개선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앞두고 연내 입법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강화 방안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 요청사항 개요

- 상고심 사건의 소가 총액(5조)과 당사자 총수(12만)에 관한 기획보도
-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 전문가 지상좌담회
- 사내 칼럼(논설위원 등)
- 기고문

3. 소가 총액과 당사자 총수

- ☑ 1년간 접수되는 상고사건의 소송물가액 합계 **5조원**
 - ➔ 대구시 1년 예산 6조원, 한-중 FTA 체결로 인한 관세절감 약 5조원
- ☑ 5조원이 자본시장에 풀리는 경우 연간 경제적 이익 **1,500억원(연 3%)**
 - ➔ 원자로 해체 기술 개발비, 세월호 인양비
 - ➔ 6개월, 1년 등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 환산 가능
- ☑ 1년간 접수되는 상고사건의 총 당사자수 **12만명**
 - ➔ 논산시 인구가 상고심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셈

■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시급성 호소

- 19대 국회에서 입법 결론에 이르러야 함(내년 4월 총선, 5월말 임기 만료)
- 상고사건 적체로 인해 상고심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고통 호소 증대되고 있으나,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음
- 구체적인 수치 제공 →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절박함 강조

■ 소가 총액의 경제적 효과 강조

- 1년간 접수되는 사건의 소가(소송물의 가액) 합계액은 5조원
- 5조원 금액과 유사한 경제적 수치와 비교
 - 지자체 예산 : 대구 6조, 대전 4조 등
 - 나로호 발사 성공의 경제 효과 5조원
 - 한중 FTA 체결로 인한 관세절감 효과 5조원
- 소송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5조원이 시장에 풀릴 경우의 경제적 가치
 - 자본시장 평균 수익률 연 3%로 환산하면 1,500억원
 - 6개월 지체되면 750억원, 1년 지체되면 1,500억원
 - 르노삼성자동차 2014년 영업이익 약 1,500억원
 - 개성공단 북한근로자의 1년 임금 합계액 약 1,000억원

■ 상고심 당사자 총 수 12만명

- 소송지연으로 인한 당사자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 해소 필요
- 소송을 신속하게 종료하고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함
- 12만명에 유사한 지자체
 - 논산시 12만, 여주시 11만, 김천시 13만 등

■ 당사자들의 경제적 손실(구체적 소송 사례 포함)

- 민사
 - ① 금액 지급을 구하는 소송 → 피고의 지연손해금 부담, 피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으로 활용 불가, 원고의 정당한 권리 행사 지연으로 인한 이윤 창출 불가 등 경제적 손실 발생
 -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피고측의 지연손해금액 부담이 막대하게 불어남 (ex 아파트 하자 관련 소송, 비행장 인근 주민 소음 손해 소송(가집행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환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미리 지급하기 곤란함))

☑ **비행장 소음 손해배상소송**

[원고] 대구 공군비행장 인근 거주 678명 → [피고] 대한민국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 1심에서 합의액 820,350,000원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 선고
- 항소기각,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 1심 결론 확정

※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이 약 3년 걸렸음**(2007. 10. 31. ~ 2010. 11. 25.)

※ [당사자의 경제적 손해] 대법원 **상고기간 약 3년여간 국가가 배상해야 할 지연 손해금액 → 504,346,684원**(배상액 원금의 61% 상당)

- ②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소송** → 처분금지 가처분 등이 이루어지면 있는 권리이전이나 근저당설정 등의 처분이나 담보활용 불가능
- ③ **해고무효확인 등 노동사건** → 근로자측은 장기간 신분 불안, 생계유지 곤란 / 사용자측이 패소한 경우 노동력 활용 없이 막대한 임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 **해고무효확인소송**

[원고] 000 → [피고] (주)현대미포조선

1997. 4. 26.자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 1심에서 승소(미지급 임금 인정)
- 항소기각,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 1심 결론 확정

※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이 약 3년 5개월 걸렸음**(2002. 2. 27. ~ 2005. 7. 22.)

※ [당사자의 손해] 대법원 **상고기간 약 3년 5개월간 원고는 근로자 지위가 회복되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상황에 처했고 임금도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상황도 악화되었음. 해고무효에 따라 임금액 상당 배상금을 지급받더라도 해고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그 이후 얻을 수 있었던 임금증가분이나 상여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도 발생함**

- ④ **부동산 철거·인도소송** : 국유지, 타인 토지를 무단점유한 채 음식점 등 영업을 하면서 철거소송, 인도소송 등을 3심까지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끝까지 부당한 영업이익을 누리는 사례 → 소송장기화에 따라 진정한 권리자(토지소유자)의 손해는 회복불가능한 경우 많음

○ **형사**

-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움
-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영인 등의 경영지위 불안,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위기감 등으로 인한 기업 활동이 어려운 점도 있음 → 이후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움

○ 행정

- ① 조세부과처분·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상고기간 동안 환급금에 대한 지연이자(가산금)의 국가 부담 증가

☑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부분만 보더라도 2013년 한 해 동안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국가가 부담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총 1,171억원에 이릅니다

- ②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무효소송 → 소송장기화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전망 불투명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경제적 손실

☑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원고] 불광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소유자 → [피고] 은평구청장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소송 제기

- 1심 : 원고 패소
- 2심 : 원고 승소(설립인가처분 취소)
- 상고심 : 파기 환송(환송 후 서울고법에서 소송계속 중)

※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이 약 2년 5개월 걸렸음(2012. 10. 18. ~ 2015. 3. 20.)

※ [경제적 손해] 위 재개발구역에는 총 2,000여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 2심 판단이 상반되고 상고심 재판 기간이 길어져 사업 속행 여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신규투자 중단, 지분거래가 없거나 지분가격이 하락하였고,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됨

- ③ 장애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 장애인정을 받아야 적정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치료비 보전 등을 받아 치료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장애인정이 지체됨으로써 원고의 고통이 가중됨

4. 설문조사

가. 요청 배경

-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상고법원안에 대한 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화·수치화된 표지(標識) 확보 필요**

- 종래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있으나, 설문내용의 객관성, 정확성을 보완하여 국민의 최종적 의견을 종합하는 계기 필요

<관련 설문조사 내역>

시기	조사주체	대상	방법	결과
2015.2.26.	중앙일보	시민 1,000명	인터넷	찬성60% : 반대40%
2015.5.28.	동아일보	"	전화	찬성64% : 반대25.8%
2015.7.8.	국민일보	"	휴대전화 앱	찬성 48.8% : 반대 18.4%
2015.8.	부산고법·지법 시민사법위원회	"	대면, 전화, 이메일 등	알고 있다, 필요하다 29% 모른다, 필요하다 56% 필요하지 않다 15%

■ 기대 효과

- 상고법원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고 긍정적 여론 조성
- 실증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다수 국민의 의사를 상고법원 반대로 규정짓는 주장을 일소하는 계기
- 상고심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입법 촉구
- 국민 권리증진, 사법복지 향상을 위해 입법적 결단 필요하다는 메시지 전달

나. 구체적 시행 방안 제안

- **조선일보 주체의 설문조사 진행으로 객관성, 공정성 확보**

- **다양한 연령, 지역의 시민 1,000명 대상**

■ 조사 시기

- 10/28부터 국회 법안심사 일정이 시작되므로, 상고법원안에 대한 법사위 논의는 10월말 또는 11월초에 시작하여 11월, 12월이 주요 논의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1안 : 10월말 또는 11월초 결과 보도(법안심사 시작 시점)

○ 2안 : 11월 중순 또는 말 결과 보도(본격적인 법안심사 심화 시점)

■ 10개 정도의 문항으로 정확하고 실속있는 조사 시행

○ ① 제도 개선 필요성, ② 상고법원안으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설계

○ 각 문항의 구체적 내용과 배열 순서 등은 설문조사 전문가와 추가 협의

[설문 예시]

※ 1심과 2심을 거쳐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을 '상고'라고 함. 현재 상고된 사건은 전부 대법원에서 심판하고 있는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담당하고 있음

※ 2014년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37,600여건으로 대법관 12명이 1인당 3,100건 정도를 처리해야 함.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이 넘어도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이 700건에 가까움

※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모이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간 20여건 정도만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건은 4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진 소부에서 재판하고 있음

※ 상고법원 개선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168명이 상고법원 도입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법원 외 별도의 상고심 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관에 준하는 경륜 있는 상고법원 판사를 임명함
- 상고법원에는 민사, 형사, 행정, 특허 등 전문재판부를 두고, 현직 판사 외에 전문성 있는 외부 법조경력자도 상고법원 판사로 임명함
- 대법원이 필수적으로 심판하는 사건을 법률로 별도 규정하고, 나머지 사건은 전부 대법관이 심사하여 대법원 사건과 상고법원 사건으로 분류함
- 심리불속행제도(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패소판결을 하는데, 판결문에 패소 이유는 기재하지 않음)는 폐지하여, 모든 사건에 판결 이유를 기재함

1. 귀하는 현행 상고 재판에서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리는 점
- ②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 ③ 사건이 너무 많아서 재판이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점
- ④ 대법관 전원합의체 재판이 너무 적은 점
- ⑤ 법정 변론 사건이 너무 적은 점
- ⑥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함

2. 귀하는 현행 상고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모르겠다 ④ 아니다

3. 상고심 제도를 개선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신속한 재판 ② 판결문에 충분한 이유 기재 ③ 전원합의체 사건 확대 등 충실한 재판
- ④ 법정 변론 사건의 확대

4. 상고법원이 도입이 되면 어떤 점이 가장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고 재판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
 - ② 상고법원에서 일부 사건이 처리되므로 대법원은 사회와 국민생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재판하는데 집중해서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③ 상고 재판이 보다 충실하게 진행되어 마지막 재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 ④ 특별히 좋아지는 점이 있을 것 같지 않다
5. 상고법원 판사는 법조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임명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상고법원 판사도 20년으로 경력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모르겠다 ④ 아니다
6. 현재 대법관은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상고법원 판사의 임명에 대하여서도 국회와 대통령이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모르겠다 ④ 아니다
7. 귀하는 이와 같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고법원안이 적절한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모르겠다 ③ 아니다
8. 위 7번에서 ③ 아니다를 선택하셨다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① 상고법원 도입안 ② 상고허가제안 ③ 고등법원 상고부안 ④ 대법관증원안

5. 지상 좌담회

가. 시기와 형식에 대한 의견

- 설문조사 결과 공표와 동시 또는 결과 공표 이후 시차를 두고 게재하는 방안
- 논설위원이 참석자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좌담회를 이끌어 가는 형식

나. 참석자¹⁾

■ 사회 원로

- 김○○(한국법학원 원장, 전 대법관), 부○○(영산대 총장), 이○○(전 양형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교수), 배○○(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실무 원로

- 이○○(전 대한변협 협회장), 권○○(전 법무부장관), 권○○(유고슬라비아국제 형사재판소 재판관, 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다양화 인사²⁾

1) 일응 3명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나 추가 검토 필요함
 2) 참석자 3명 모두 남성의 사회 원로만으로 구성될 경우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입장에서 상고법원에 대한 찬성 의견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함

- 전○○(전 양형위원회 위원장, 전 헌법재판관), 전○○(전 대법관), 박○○(인하대 법전문원 원장, 전 대법관), 차○○(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하○○(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다. 좌담 내용(안)³⁾

■ 도입

- 상고법원 관련 법안 제출 및 법사위 논의 상황 소개

■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 공통 인식

- 대법원의 상황 + 글로벌 스탠더드
- 국민의 불이익 방지 불가
- 제도 개선 공감대 형성 확인 : 법사위 공청회 및 설문조사 결과 소개

■ 상고심 개선의 역사 : 모두 실패 → 근본적인 대안 필요

- 기존 제도 도입 역사 및 한계
- 참여정부 논의 : 고법상고부
- 이명박 정부 논의 : 대법관 증원론 폐기

■ 상고법원안 소개

- 상고법원안 논의 배경 및 법률안의 주요 내용
- 상고법원 도입의 기대 효과
 - 신속 : 설문조사 결과 인용
 - 충실 + 전문 + 친절한 사법서비스 + 심불 폐지
 - 전원합의체 활성화 : 정책법원 기능의 효용

■ 쟁점 1. 위헌론 주장

- 학계 다수설과 헌재 결정
- 외국 사례 소개

■ 쟁점 2. 상고법원 판사 임명

- 문제제기의 핵심
- 대안 논의 - 상고법관 추천위원회
- 외국 사례 소개

■ 쟁점 3. 대법관 증원의 한계

3) 구체적인 논의 자료 사전 제공

- 전원합의체 활성화 방향에 역행 :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상황
- 헌법 예정 사항 아님
- 인사청문회의 현실적 문제

■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사실심 충실화는 법조 3륜의 공통적인 책임이라는 점 인식 필요
 - 법원 : 사실심 충실화에 대한 책임감
 - 검찰 : 객관의무 + 공정성 강화 → 충실한 사실심 구현의 협조의무
 - 변협 : 충실한 사실심 구현의 핵심 주체
-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할 필요
- 상고심 제도 개선 구현 + 불필요한 상고 절제 → 선진 사법시스템 구현

■ 결론 : 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국회의 책임 강조

- 동일한 논의 반복 역사
-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신뢰 기준 외면하는 방향의 위험성
- 광복 70주년 등 역사적 의미에 비추어 논의 종결 필요

6. 사내 칼럼과 기고문 게재 요청

가. 사내 칼럼

■ 설문조사 진행 기관으로서 조사 결과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시하는 취지

- 국민이 바라는 상고제도 방향 + 상고법원안의 쟁점과 대안 +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 확인(설문조사 언급)

나. 기고문

■ 설문조사 결과 및 지상좌담회 논의를 접한 이후의 국민 입장 대변

- 상고제도 개선의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확인 계기 + 국회 논의에서 최종 결론 기대

■ 후보자

- 좌담회 후보자 중 실제 참여하지 않은 영향력 있는 원로급 인사 등



상고법원 법률안 11월 정기국회 통과 전략

2015. 11.

기획조성실

1. 검토 배경

■ 19대 국회 법률안 통과를 위한 최후의 법률안 심사 일정 도래

- 19대 국회 12. 9. 정기국회 종료로 사실상 활동 종료 예상
 - ①내년 총선 대비 등 여러 복잡·다난한 정치 현안 존재, ② 예산안 심사도 12. 2.까지 마무리 예상 ⇨ 예년과 같은 12월 임시국회 개의 기대 난망
- 11. 2. 법사위 1소위 개의를 필두로 앞으로 약 1달 동안 진행될 법률안 심사의 장에서 입법추진을 위한 마지막 총력 투입해야 할 상황

■ 현 국회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최후의 타개책 검토

-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법사위 1소위 통과가 매우 여의치 않은 상황 ⇨ 1소위 의원 접촉·설득 등 기존 노력과 병행하여, 現 국면을 전환·극복할 수 있는 최후의 입법추진 방안 모색 필요

2.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국회 현황

가. 법사위원들 성향

■ 법사위 내 찬반 입장 팽팽한 분위기

- ①찬성(7명): 이상민, 홍일표, 이병석, 정갑윤, 김재경, 박지원, 임내현, ②반대(5명): 이한성, 김도읍, 김진태, 전해철, 서기호, ③유보(4명): 노철래, 우윤근, 이춘석, 서영교 ⇨ 실질적으로는 찬성에 가까운 유보



- 다만, 지난 8. 20. 한명숙 사건 판결 이후 야당 법사위원들의 불만 및 정치적 공세 고조되면서 상고법원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커져 있는 상태

☑ 전해철 법사위 여당 간사 비공식 반응(의원실 보좌진 전언)

“한명숙 사건 선고로 상고법원은 물 건너 갔다. 상고법원 법안에 결코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다”

- 여당은 법무부·검찰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검찰 출신 의원들(이한성, 김도읍, 김진태 의원)이 노골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

▣ 특히, 법안 심사 최대 관문인 **법사위 1소위 극복이 난공불락**

- 반대 의원 대거 포진(총 8명 중 5명) ⇨ 이한성, 김도읍, 김진태, 전해철, 서기호 의원

- 여당 간사 겸하는 1소위 위원장 및 야당 간사 모두 반대 입장

- 1소위 위원장 이한성 의원의 (중략) 도 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다만, 법사위원장 등 여야 중진 의원들은 상고법원안 통과 등 상고심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 법사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19대 국회 내 상고심 제도 개선 달성해야한다는 강력한 추진 의사 표방

- 개인적으로, 17대 국회에서 고법 상고부 설치 좌초 및 이후 제도개선 지체 상황 등에 대한 주관적 아쉬움 등 교착되어 있는 상태

- 19대 법사위 하반기 법사위원장 취임 이후 저조한 법안 처리 실적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

- 다만, 법사위원장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신뢰와 지지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의해서 바라볼 포인트

☑ 이상민 법사위원장에 대한 법사위원 등 국회 내부 평가



(중략)

- 이병석, 박지원 등 여야 일부 다선 의원들도 상고법원안에 대하여 찬성 입장에 서 있음

☑ 이병석 의원 대법원 국정감사 발언 중

“본 위원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법안 공동발의자로 제 소신에 따라 국민의 신뢰 받는 법원,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지향하는 대법원의 뜻에 동의함”

☑ 박지원 의원 대법원 국정감사 발언 중

“본 의원은 상고법원 제도가 처음 제안되었을 때부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과 함께 상고심의 업무 폭주를 막고, 또 지방법원 항소부 판결도 고등법원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하급심을 강화하는 조치가 선행이 된다는 조건하에 찬성을 했음”

나. 상고법원 법률안 심사 진행 상황

▣ [형식적·시기적] 법사위 1소위 회부 이후 법률안 심사 거의 진전 없는 상태

- 상고법원 법률안 발의 및 심사 경과

- ▶ 2014/12/19 법률안 발의
- ▶ 2015/4/20 법사위 전체회의 공청회 실시
- ▶ 2015/4/29 1소위 회부
- ▶ 2015/6/17 1소위 심사 ⇨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법무부·법원행정처 의견 청취 후 종료
- ▶ 2015/7/17 1소위 안건 상정되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논의 개시 불발
- ▶ 2015/7/21 1소위에서 첫 실질적 심사 ⇨ But, 법률안 내용과 다소 동떨어진 하급심 충실화 조건, 법률안 발의 형식 지적 등 피상적 논의만 이루어짐

- 1소위 회부 후 약 6달이 경과하였음에도 논의 경과 매우 지지부진

▣ [실질적·내용적]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

- 안건으로 논의 착수한 2차례 1소위에서, 의례적인 법률안 심사 개시



에 머물거나, 법률안 발의 배경·형식, 하급심 충실화 필요성 지적 등 법률안의 핵심에서 벗어난 공허한 발언 주고받기에 그침

- 상고법원안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할 중요 법률안임에도, 안전 상정 여부나 안전 순위에서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음

- 국정감사 이후 다시 개의한 10. 20. 1소위 안전에서 배제됨

☑ 10. 20. 1소위 안전 미상정 경위

- 야당 간사 전해철 의원실 초안에 안전으로 미상정
- 1소위 위원장 겸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실 초안에는 상정(법원 담당 보좌관이 포함시킴)되어 있었으나, 이한성 의원이 해당 보좌관을 나무라며 확정안에서 상고법원안 삭제할 것 지시

- 11. 2. 개의하는 1소위 안전에도 포함되지 않음

☑ 11. 2. 1소위 안전 미상정 경위

- 홍일표 의원 등을 통해 이한성 의원에게 상고법원안 상정 강력 주문
- 이한성 의원이 전해철 의원에게 상정 요청하였으나 전 의원이 이를 거부 ⇨ 야당 간사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의사일정 상정 불발
- 설령 의사일정에 포함되었더라도, 후순위가었을 것이라는게 유력한 전언

3. 11월 입법 추진을 위한 타개책

가. 타개책 모색 필요성

- ▣ **현 상황에서는, 11월 추가 개의 예상되는 1소위에서도 안전 상정 및 충실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음** ⇨ **특위 구성 VS 전체회의 부의** 등 대안 필요

- [문제 상황 ①] 야당 간사 전해철 의원의 강력한 반대 ⇨ 법원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노골적인 이유 들면서 안전 상정 자체를 저지하고 있음
- [문제 상황 ②] 이한성 1소위 위원장의 안전 상정 주도권 행사 등 역량 부족 ⇨ 1소위 위원장 지위에서 안전 상정 주도할 수 있으나,



우유부단한 태도 보이며 야당 간사 동의 없는 안전 상정은 불가하다는 입장 고수 중, 안전 상정되더라도 임기응변과 중재능력 부족으로 반대 의원들의 기세를 누를 수 있는 능력 발휘 못할 것

● [문제 상황 ③] 법사위 1소위 안전 상정되어 논의 개시되더라도, 現 1소위 구도 속에서 상고법원 법률안 가결 기대는 요원

- 법무부·검찰의 종속 변수인 이한성, 김도읍, 김진태 의원은 견제·반대 프레임에 갇혀 있음
- 야당의 전해철, 서기호 의원도 반대 수위와 강도를 유지하고 있음

▣ **내년 총선 준비 등 정치 현안에 밀려 1소위 논의 기회 자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 높음**

● 법사위원장 등 일부 의원들이 법률안 처리에 강한 열의 보이더라도, 11월 1달 동안 추가 개의 예상되는 1소위 횟수는 2~3회가 전부일 것

● 그마저도 내용상·시간상으로 충실한 회의가 되리라 장담할 수 없음

- 의원들이 법률안 처리 실적에만 관심 가지고 회의 진행할 가능성 높음
- 이미 10월 이후 개의하고 있는 1소위에는 대부분 큰 쟁점 없이 쉽게 통과될 수 있는 법률안 위주로 안전 상정하는 경향 나타나고 있음

나. 구체적 방안 ⇨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非常의 타개 방안 모색

1) 국회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법안심사 특위 구성** 방안

▣ **1소위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특위 구성** ⇨ 특위에서의 밀도 있는 집중 심사 통해 법률안 통과

☑ **법안심사특위 구성 사례**

▶ 17대 국회에서, 사개추위가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내에 법안심사 4인 특위 구성



▶ [구성 배경]

- 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재정신청 전면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 공판중심주의 심리절차 확립 등), **2006. 1. 6. 발의**
- 이후 법안심사1소위를 수차례 열었으나, **의원들의 이해 부족, 입장 차이** 등으로 **2006년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논의 지지부진**
- **2007. 2.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문병호 의원, 한나라당 주성영, 이주영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4인 특위 구성**

▶ [4인 특위 운영 성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집중 심사** ⇨ 원안에 **이의 없는 내용, 수정 합의 내용**, 4인 특위에서도 **합의되지 않아 1소위로 회부할 내용 구분**
- **4인 특위에서 1차 정리된 내용을 1소위에서 확인하고 추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 **2007. 4.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하여, 2008. 1. 1.부터 시행

■ 특위 구성의 법률적 근거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②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 특위 구성 시기

-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서는 **11월 초순 이내 신속한 구성 필요**

■ 특위 구성 방법

- **신속·효율 진행에 적합한 2인 특위 또는 17대 국회 때와 유사한 형태의 4인 특위**로 구성
- [특위 의원 조건] ① **영향력 있는 중진급 의원** 중, ②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 높고 법원에 우호적인 의원**으로 구성
- 17대 국회 4인 특위 때도, 여야 간사(주성영, 이상민 의원) 및 1소위 위원장(문병호 의원)이 특위에 참여함



- 특위 의원 후보군

- [여당 ①] **홍일표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자로서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 제일 높고 법원 입장 대변해 줄 수 있는 의원, 다만 이러한 점이 특위 참여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키울 수도 있음
- [여당 ②] **이병석 의원**: 4선 의원이자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타 의원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 보유, 법원과 우호적 관계 유지하고 있고 상고법원안에 대하여도 찬성 입장
- [야당 ①] **우윤근 의원**: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3선 의원, 품격있는 발언태도와 유연한 협상능력으로 여야 의원들의 신망 두텁고, 상고법원안에 대하여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음
- [야당 ②] **이춘석 의원**: 야당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및 운영위 간사 역임 등 활발한 원내 활동으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시 못 할 영향력 보유, 을사 출신다운 합리적·논리적 사고 및 판단능력으로 상고법원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보이고 있음

- 특위 구성 방안

- [제1안] 여야 각 1인씩 구성 ⇨ 여당 **이병석** 의원, 야당 **우윤근** 의원
- [제2안] 여야 각 2인씩 구성 ⇨ 여당 **홍일표, 이병석** 의원, 야당 **우윤근, 이춘석** 의원
- 여야 간사는 특위 구성 취지 및 배경 등 고려하여 둘 다 배제

■ 특위를 활용한 상고법원 법률안 통과 성사

- 상고법원 법률안을 올해 내 중점 처리 법률안으로 규정짓고 특위에 상정
- 1주일에 1~2회 가량 집중 심사를 거쳐, 원안 통과 의견 또는 대안 등 수정 가결 의견 도출
- 특위를 1소위 대체형으로 운영할 경우 ⇨ 특위 논의 후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 특위를 1소위 대체형이 아닌 보완형 소위원회로 운영할 경우 ⇨ 1소위에서는 특위 심사결과를 형식적으로 추인하거나, 가결을 전제로 세부 사항을 보완하는 형태로 심사 진행
- 특위 또는 1소위 가결 후, 정기국회 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 추진

2) 전체회의 부의 방안

▣ 개요

- 1소위 계류 중인 상고법원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부의하여 심사 후 의결하는 방안

▣ 가능한 방안

- [제1안] 1소위 의결로 전체회의 회부 ⇨ But, 1소위 위원장 등 의원들 반대 시 불가능
- [제2안] 심사기관 도과 후 전체회의 부의 (국회법 제71조, 제85조)
 -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 시, 1소위 회부 안전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 가능 (국회법 제85조 제1항 3호) ⇨ 1소위에서 그 기간 내에 심사 마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은 중간보고 듣고 전체회의 부의 가능(국회법 제85조 제2항)
 - But, 여야 간사 반대 시 불가능
- [제3안]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전체회의 부의 (국회법 제71조, 제77조)
 -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고 (국회법 제71조 제2문), 위원장은 의사일정 변경 시에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음(국회법 제77조)

☑ 의사일정 변경 전례

▶ 2005. 6. 29. 제17대 254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노회찬 의원 외 1인 찬성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상정 ⇨ 2소위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

▶ [표결 결과] 찬성 7인, 반대 2인으로 당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였으나, 결론



못 내리고 계속 심사

- [검토] ⇨ 제3안이 현실적 타개책으로 적합
 - 1소위 의결 요하거나 심사기간 지정하는 제1, 2안은 여야 간사의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추진 불가능
 - 현재 법사위원들 중 과반수가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해 찬성 내지 조건부 찬성 입장 ⇨ 의사일정 변경동의 안건 상정하여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는 것이 1소위 논의 지연되고 있는 특단의 상황에서 올해 안에 중요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임

3) 특위 구성 방안과 전체회의 부의 방안 선택적 추진 가능

▣ 특위 구성 방안의 장점 및 고려사항

- [장점] 특위가 1소위 역할을 대신하여 법률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법사위 내 충분한 담론을 이어갈 수 있음
- [고려 사항] 원활한 특위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여야 간사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고, 무게감 있는 특위 참여 위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성숙되어야 함

▣ 전체회의 부의 방안의 장점 및 고려사항

- [장점] 회의 주재권 있는 위원장의 확고한 의사, 2명의 안건 발의의원만 충족되면, 여야 간사 등과의 사전 교감 없이도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추진할 수 있음
- [고려사항] 다만, 법사위 내부 의견 수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인다면, 전체회의 안건 상정 표결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강경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고, 법률안 심사에도 악영향 미칠 수 있음
⇨ 우호적 법사위원들에 대한 사전 접촉을 통해 전체회의 부의 방안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획득해야 함

- ▣ 향후 법률안 심사 일정, 논의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법사위 내부 분위기와 입법 추진 상황에 보다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여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함

다. 타개책 추진 방안

▣ 타개책 즉각 착수 필요

- 약 1달밖에 남지 않은 법률안 심사 일정 속에서 11. 2. 1소위 안전상정 불발되어 매우 촉박한 국면에 직면
- 11. 2. 1소위 안전 미상정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 표명하면서 국회 법사위에 특위 구성 방안 등 강력 요청해야 할 상황

▣ [구체적 방안 ①] 11. 3.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장님 발언

- [개요] 11. 3. 10:00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시는 처장님께서 회의장에서 법사위원들에게 특위 구성 등에 의한 상고법원 법률안 처리 강력 촉구
- [장점] 법사위 전체회의 현장에서 찬성 입장의 중진 법사위원들의 호응 이끌어내는데 유리 ⇨ 특위 구성 등에 관한 공론화 가능
- [단점] 전해철 의원 등 일부 강성 반대 의원들의 반발도 클 수 있음
- [사전 정지 작업 필요] 미리 법사위원장, 홍일표 의원 등에게 처장님 전체회의 발언 필요성 설득하고, 사전 양해 및 적절한 발언 타이밍 확보해 두는 것이 긴급

▣ [구체적 방안 ②] 처장님 명의의 서한 전달

- [개요] 법사위원장 앞으로 특위 구성 등 방법으로 상고법원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하는 처장님 명의의 공식 서한 작성하여 전달
- 서한 내용에 1소위 처리 지연 상황 및 특위 구성 등 대안 추진 필요성 포함
- [시기] ①안: 11. 2. 방문·전달하여 11. 3. 전체회의에서 서한 내용 법사위원들에게 공개되도록 하는 방안, ②안: 11. 2. 1소위 이후 금주 내 법사위원장 방문하여 현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공식



적 서한 전달하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법사위원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방안

- [장점] 공식적 항의 및 유감 표명으로, 법사위에 대한 강한 압박 수단될 수 있음
- [단점] 법사위원장의 공식 서한에 대한 반응 미미할 경우, 전체 법사위원들에게 미치는 파급력도 기대하기 어려움
- [사전 정지 작업 필요] 사전에 법사위원장에게 서한 전달 사실 고지함과 아울러, 서한 내용을 전체 법사위원들에게 무겁게 전달하여 특위 구성 등 공론화 이끌어줄 것 주문

■ [구체적 방안 ③] **대법원 공보관 명의의 촉구 성명 또는 기자회견**

- [개요] 특위 구성 등을 통한 법사위의 조속한 상고법원 법률안 처리 촉구
- [장점]
 - 언론 보도를 통해 대법원의 노력 대외적으로 부각
 - 공식적인 촉구 요청으로 국회 법사위의 무책임한 태도 등 공론화
- [단점]
 - 대법원의 입장만 강조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
 -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을 경우, 법사위에 미칠 영향 미미



상고법원 추진 연착륙 방안[대내적 전략]

2018. 7. 31.

법원행정처

1. 현황과 필요성

- 상고법원 입법 추진의 사실상 중단은 **법관 사회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
 - 그동안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법원이 지나치게 올인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였음 ⇨ 그로 인하여 각종 인사·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오해도 누적
 - 입법 추진이 중단될 경우 ⇨ 누적된 오해와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될 가능성 있음
- 특히 **사법행정 추진 환경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법원 조직 전체의 내부적 동요 ⇨ 중요 사법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풍조 확산, 대법원장님의 리더십 약화 초래까지 우려
-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
 - 법관 사회의 전반적 여론 상황을 점검 ⇨ 근거 없는 오해와 심리적 동요를 차단·불식하고 안정을 도모할 필요 있음
 -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에서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 모색을 종합적으로 시도함

☑ 분석·접근 방법

- ▶ [미시적 접근] 상고법원 정책 자체에 초점 ⇨ ①**법관 여론의 향배**와 ②**입법 추진 잔여 일정** 고려
- ▶ [거시적 접근] 사법행정 전반 차원에 초점 ⇨ ③**사법부 추진 사법정책의 전체적 균형**과 ④**대법원장님의 임기 cycle** 고려



2. 현황 · 정세 분석

☑ 개요

- ▶ ①[미시적 고려 요소①] **각급 법원 법관들의 관심 방향과 그 정도**
- ▶ ②[미시적 고려 요소②] **공식적·비공식적인 잔여 입법 추진 일정**
- ▶ ③[거시적 고려 요소①] **대법원장님의 임기 cycle**
- ▶ ④[거시적 고려 요소②] **사법정책 전반의 균형 추진 필요 시점**

▣ ①[미시적 고려 요소①] 각급 법원 법관들의 관심 방향과 그 정도

- **냉정하게 분석**해보았을 때, 상고법원 정책에 대한 각급 법원 법관 대다수의 관심의 대상·방향·정도는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①관심의 대상	'상고법원 정책 자체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상고법원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여하'임
②관심의 방향	(기수·연령·직급이 낮을수록) 상고법원의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에 큰 관심 있음
③관심의 정도	전반적으로 기대만큼 높지 아니하였음

- [원인①] 사회의 전반적 가치관 변화로 법관들의 관심사가 철저히 개인화
- [원인②] 기수·연령·직급이 낮을수록 상고법원 설치를 통하여 확대·신설되는 상위 보직에의 접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원인③] 내부적으로 boom-up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착안점]**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착안점
①관심의 대상	'상고법원 정책 자체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상고법원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여하'	➔ 정책 좌절 자체로 인한 상실감은 그리 크지 아닐 가능성



<p>②관심의 방향</p>	<p>(기수·연령·직급이 낮을수록) 상고법원의 '부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에 큰 관심 있음</p>	<p>➔ 정책 추진으로 인한 기회비용 문제[즉, 여타의 사법정책 추진 상황·내역]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가능성</p>
<p>②관심의 정도</p>	<p>전반적으로 기대만큼 높지 아니하였음</p>	<p>➔ 선제적 문제 제기 가능성보다 후발적 반응 가능성</p>

■ ②[미시적 고려 요소②] 공식적·비공식적인 잔여 입법 추진 일정

● 실질적·비공식적 잔여 일정 ⇨ 사실상 기한 이미 종료

- 11월 중에 법사위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올해 안에 법률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짐

● 하지만, 형식적·공식적 잔여 일정 ⇨ 2016. 5. 29.(19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음

- 어차피 법률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에 폐기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 미리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음

☑ '형식적·공식적 잔여 일정'의 유의미성

▶ 홍일표 의원 ⇨ "내년 4월 총선이 끝난 후 임기 종료 시점 사이에 개최될 마지막 임시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때가 되면 의원들이 특정 사안에 참여하게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선선히 협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18대 국회 ⇨ 실제로 국회선진화법 등 4개 법안이 총선 후 5월 마지막 임시회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통과되기도 하였음

● [착안점] 사법행정 당국자의 공식적 의견 표명 시점 결정에는 형식적이지만 공식적인 일정이 고려될 수밖에 없고, 그 시점은 아직 상당한 기간을 남겨두고 있음

- 연착륙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활용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 있음



■ ③[거시적 고려 요소①] 대법원장님의 임기 cycle

- 임기를 초반·중반·종반으로 3분하였을 때 終盤期에 해당하는 시점
 - 현 대법원장님 임기 ⇨ 2011. 9. ~ 2017. 9.
- **[착안점]** 임기 종반기에 중요 사법정책 추진 중단의 부정적 이미지가 지나치게 강하게 투영될 경우 레임덕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함
 - 부정적 이미지·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여야 함

■ ④[거시적 고려 요소②] 사법정책 전반의 균형 추진 필요 시점

- 역시 대법원장님 임기를 고려한, 큰 그림으로 접근할 필요 있음
- **[착안점]** 임기 종반기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여타 중요 사법정책 역점 추진, 활용을 통하여 긍정적 이미지의 상쇄·보완 효과를 기대

3. 구체적 방안

☑ 개요

- ▶ ①[미시적 고려 요소①] 각급 법원 법관들의 관심 방향과 그 정도
 - ☞ 현 시점에서 즉각적인 高수위의 입장 표명은 불요
- ▶ ②[미시적 고려 요소②] 공식적·비공식적인 잔여 입법 추진 일정
 - ☞ 공식적 브리핑 시점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 시로 함
- ▶ ③[거시적 고려 요소①] 대법원장님의 임기 cycle
 - ☞ '상고법원 정책의 중단'이 아니라, '상고심 개선 방안을 포함한 사법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을 표방
- ▶ ④[거시적 고려 요소②] 사법정책 전반의 균형 추진 필요 시점
 - ☞ 임기 종반에 추진되어야 할 비전·정책의 적극적 발굴·추진

■ ①[미시적 접근 방안①] **현 시점에서 즉각적인 高수위의 입장 표명은 불요**



- [개요] ① 사법행정 당국자의 입장 표명은 ‘정책 중단·실패’의 이미지를 강하게 남기게 되므로 가급적 지양, ②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하여 낮은 수위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사실 전달, 정보 공유만 시도

- [기대 효과①] 각급 법원 법관들의 관심의 대상·방향·정도를 고려하여 볼 때, 즉각적인 고수위의 입장 표명은 불필요한 분란만 야기할 우려가 큼

- ① 정책 좌절 자체로 인한 상실감이 그리 크지 아닐 가능성 ⇨ ‘**정책 추진 중단**’ 자체를 부각시킬 필요 없음
- ② 정책 추진으로 인한 기회비용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가능성 ⇨ 상고법원 정책 중단에 관한 언급보다 **여타 사법정책 추진 계획에 관하여 밝히고 이를 통하여 어필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것임**
- ③ 선제적 문제 제기 가능성보다 후발적 반응 가능성 ⇨ **분란을 야기할 소재·화제를 먼저 던질 필요 없음**

- [기대 효과②] 사법행정 당국자의 지나친 유감 입장 표명은 **대법원장님의 레임덕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참고] 대통령 사과의 딜레마·약순환

▶ **대국민 사과** ⇨ **국민 분노** ⇨ **레임덕 심화** ⇨ **대통령의 권위 추락**

▶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때마다 국민들은** 측은함을 느끼기보다는 **분노를 표출하여 결국 레임덕 현상을 심화시키고 대통령의 권위 추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임** ⇨ **고위 책임자의 사과나 유감 표명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극도로 자제하여야 함**

- [구체적 방안]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법원장을 통하여 ‘① **현재 상황의 냉정한 전달** + ② **19대 국회 잔여 임기 동안 마지막까지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

▣ ② [미시적 접근 방안②] **공식적 브리핑 시점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 시로 함**

- [개요] 최종적으로 법률안 폐기 시 유감 표명 가능



- [기대 효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cooling time)을 확보하여 실질적 연착륙 도모
 - 그 시간 동안,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임기 중반에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제시하는 등 사전 정지 작업 실시
- [구체적 방안] 다음과 같이 진행함
 - [1차 대응] 공보관 명의로 브리핑 ⇨ 상고법원 입법 추진 실패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유감 표명
 - [필요한 경우 2차 대응] 긴급실국장회의 후 법원행정처장 명의 또는 대법관 행정회의 후 대법원장 명의로 (공보관이) 브리핑 ⇨ 현행 법령 하에서 대법원의 본래적 기능 정상화와 국민의 신속하고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단호한 의지 표명
- ③[거시적 접근 방안①] '상고법원 정책의 중단'이 아니라, '상고심 개선 방안을 포함한 사법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을 표방
 - [개요] 중단 선언이 아닌, 중장기 추진 과제로 전환
 - 여타 주요 사법정책과 함께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하는 스탠스를 유지함
 - [기대 효과] '중요 사법정책의 좌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대법원장님 리더십 손상 또는 레임덕 가능성을 최소화
 - [구체적 방안] 다음과 같이 진행함
 - [1단계] 전국법원장회의 직후~19대 국회 임기 종료 시 ⇨ 현재와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되, 여타 주요 사법정책과 균형 도모
 - [2단계] 19대 국회 임기 종료 시~ ⇨ 중장기 추진 과제로 전환
 - 이에 따른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



시기	2015. 12.			2016. 1.			2.			3.			4.			5.			
	초순	중순	하순	초순	중순	하순	초순	중순	하순	초순	중순	하순	초순	중순	하순	초순	중순	하순	
주요 일정	법원 장 회의		동계 휴정	동계 휴정					설 정기 연휴 인사					총선			임시 국회	임시 국회	19대 임기 종료
추진 개요	①사실 전달			②정책 우선순위 조정, 임기 종반의 적극적 비전 제시									③의견 표명						
구체 내용	- 법원장회의를 통한 사실 전 달, 정보 공유			- 대표 정책, 민생 정책 등 임기 종반의 적극적 추진 정책을 전면 에 내세워 추진함 - 상고법원 추진은 현재와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되, 여타 주요 사 법정책과 균형 도모									- 최종적으로 법 률안 폐기 시 유감 표명 - 중장기 과제로 전환						

- [유의점] 다만, 상고심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계속 유지할 경우, 대법관 증원론 등 외부로부터의 역풍에 유의하여 대비할 필요 있음

■ ④[거시적 고려 요소④] 임기 종반에 추진되어야 할 비전·정책의 적극적 발굴·추진

- [개요] ‘상고법원 추진 중단’이라는 ‘부정적·소극적 행보’가 아니라 ‘여타 주요 사법정책의 균형적 추진’이라는 ‘긍정적·적극적 행보’를 통하여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방안 구사
- [기대 효과] 대법원장님의 임기 종반기 관리 차원의 접근이기도 함
- [구체적 방안①] 대표 정책의 완성

☑ [참고] 대표 정책·업적의 중요성

- ▶ 지도자는 퇴임 후에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 업적이 있어야 함 ⇨ 이를 통하여 훗날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음
- ▶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 ‘물대통령’, ‘레임덕 정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5년 내내 흔들렸으나, ‘북방정책’이라는 대표 업적 덕분에 나름대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음

- 현 대법원장님의 대표 정책은 결국 ‘소통 정책’ 이어야 함 ⇨ 임기 종반에는 임기 동안 진행됨 소통 정책을 최대한 완성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①국민과의 소통 ⇨ 행사 중심의 소모적 형태를 지양하고 스마트한 소통 정책의 완성 형태를 연구하여 현 대법원장님의 임기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통 정책을 제시하여야 함
- ②내부 소통 ⇨ ‘사법행정참여위원회’ 등 사법행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참여 보장을 추진하여야 함, 이는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쌓인 법관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효과도 클 것임

● [구체적 방안②] 민생 정책 강조·주력

☑ [참고] 민생 정책의 중요성

- ▶ [예] 한국 대통령의 경우 ⇨ 결국 임기 말 시점의 경제 성적표가 대통령 임기 전반에 대한 평가를 좌우함
- ▶ [예] 2012년 미국 대선의 경우 ⇨ 태풍 피해가 발생하자 오바마와 롬니는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전략에 주력, 특히 오바마가 3일 동안 유세를 중단한 것이 큰 호응을 받음

- 법관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소형 이슈’ 들을 전면에 내세워 검토·추진할 필요 있음
- ①복지 ⇨ 이미 상당히 많은 아이템이 개발·집행되었으나, 더욱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 ②법원문화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성평등, 부장-배석 관계, 사무분담, 근무평정,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라인 등의 이슈를 대법원장님이 직접 챙기고 개선 방향을 제시

☑ [유사 사례] 배석판사의 사건 메모 작성·납품 문제

- ▶ 대법원장님께서 직접 적극적인 견해를 수차례 의견·관심 표명[21기 부장판사들에 대한 연임법관 간담회 시 문제 제기·권고, 각급 법원 업무보고 시 재당부·재확인] ⇨ 관행 개선 ⇨ 각급 법원 법관들로부터 큰 호응

[끝]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 검토

2015. 3. .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최근 외부의 상고법원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상고법원안 입법 추진 동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현재 법사위 내부에서도 상고법원안은 법사위 제1소위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 중인 상태로 4월 공청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음
- 기존 상고법원 관련 공청회, 정책세미나 및 법사위 전체회의 등에서의 논의는 상고법원 찬반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뿐 보다 생산적인 논의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존 상고법원 논의의 물줄기를 돌릴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상고법원안의 법사위 통과 로드맵을 재점검하는 한편, 법사위원들의 찬반 입장, 기존의 법사위 논의 진척 경과 등에 비추어, 현재 법사위 논의 프레임의 전환, 4월 법사위 공청회 대응 전략, 공청회 이후의 대응 전략 등 상고법원안에 대한 법사위 통과 전략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 있음

2. 법사위 통과 로드맵

가. 4월 국회

- 최초 전체회의 이전에 법사위 공청회 개최 ⇨ 직후 제1소위 회부 추진
 - 4월 국회 의사일정
 - 전체 회기 ⇨ 4. 7. ~ 5. 6. / 교섭단체 대표연설 ⇨ 4. 8. 및 4. 9. / 대정



부질문 4. 13. ~ 4. 16. / 본회의 ⇨ 4. 23., 4. 30. 및 5. 6.

-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 이전인 4. 10.(금) 또는 4. 17.(금) 공청회 추진

▣ **법사위 제1소위 본격적 논의**

- ① 3. 10. 출범한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논의 경과 설명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 및 성과 홍보
- ② ‘상고법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정책연구용역 결과 초안 발표 ⇨ 상고법원의 경제적 효용 구체적 수치로 홍보
- ③ 입법 환경 및 논의 진행상황에 따라 수정안 제시 ⇨ 대법원 사건 분류 기준, 상고법원 법관 임명 등 절차, 필수적 변호사 대리, 지부 설치 등

나. 6월 국회

▣ **법사위 제1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

☑ 6월 국회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임기만료 및 자동폐기 가능성 높
 👁️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으로, 법안심사는 12월이 돼서야 논의 가능하나, 20대 총선 준비 등으로 상고법원안은 큰 이목을 끌지 못할 것으로 예상

3. 상고법원에 대한 법사위원들 입장

▣ **법사위원들 찬·반 입장 (한겨레 1. 7.자 기사 참조)**

	찬성(4명)	유보(8명)	반대(2명)
여당	*홍일표 ¹⁾	*노철래, *이병석, 이한성, *정갑윤	김도읍, (중략)
야당	*박지원, *서영교, *임내현	이상민, 전해철, 우윤근, *이춘석	서기호

▣ **2015. 3. 김재경 위원 새 법사위원 임명(박민식 위원 사임)**

- 울산 출신의 3선(17~19대 경남 진주시을) 의원으로서 검사 출신이며 현

1) ‘*’는 공동발의자임



재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음

- 상고법원안에 반대하는 박민식 위원 대신, 상고법원안 공동발의자로서 상고법원안 지지자인 김재경 위원이 새로이 법사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호재인 것은 분명함
- 그러나, 2015. 5. 홍문표 예결위원장과 윤리특위위원장의 자리를 서로 맞바꾸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 그것이 현실화될 경우 6월 국회에서는 또 다른 의원이 새 법사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 높음

▣ 2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질의 요지

- 서기호 위원 ⇨ 상고법관 임명절차 문제 제기, 4심제 논란, 상고사건 증가 원인 등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 임내현 위원 ⇨ 상고법관 임명과정에 대한 대안 제시 필요
- 노철래 위원 ⇨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전해철 위원 ⇨ 하급심 강화 방안 철저 실시, 대법관 구성 다양화 필요

4. 법사위 통과 전략

가. 법사위 논의 프레임 변경

1) 현황 및 프레임 변경 필요성

▣ ① 상고법원안 VS 대법관 증원론 ⇨ **상고허가제 VS 대법관 증원론**

- 상고법원안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고, 상고심 개선 대안으로 대법관 증원론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일부 감지됨
- 현재 구도로서는, 국민 일반에게 상대적으로 생경한 상고법원보다 직관적으로 이해되기 쉬운 대법관 증원론에 보다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상고법원안은 양 극단인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론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법현실에 맞춘 한국형 상고허가제라는



점을 이해시키고, 관철해내기 위해서는, 논의 프레임을 상고허가제 VS 대법관 증원론으로 변경할 필요 강함

▣ [2] **대법원 VS 법사위원들** ⇨ **법사위원 VS 법사위원**

-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할 뿐, 법사위원들 사이에는 생산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인 입법 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법사위원들 중 일부로 하여금 상고허가제의 도입을 주장하게 함으로써, 법사위원간의 논쟁을 촉발시켜 활발한 논의를 유도하는 한편, 대법원은 기존의 수세적 당사자 입장에서 벗어나 객관적 제3자로서의 조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임

2) 법사위 내 ‘상고허가제’ 주장 전파 전략

▣ **[새누리당] 이병석 위원**

- [지위] 4선 중진 ⇨ 당내 영향력 至大
 - 포항에 지역구를 둔 국회 부의장 출신 4선 의원 중진으로서, 당내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법사위 내 부산경남 지역구 위원(김도읍 위원) 등에 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공략 Point] 이병석 위원의 관심사 공략 ⇨ 상고허가제 관련 발언에 대한 설득 효과 극대화
 - [1] **노후화된 대구법원 청사 이전 적극 추진**

☑ **2014. 10. 국정감사 이병석 위원 관련 발언**

☞ “이번에 대구에 가서 국정감사를 해 보니까 대구법원과 검찰청사가 41년이 넘어 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이 불편은 우리가 불편한게 아니라 사법을 활용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국민과 시민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 **대구법원 청사 이전 부지 관련 현황 ⇨ 대구시 협조 필요**

☞ 어린이회관 부지 or 남부정류장 or 연화사거리 부지 or 경북도청 후적지
☞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필요



- [2] 포항 법원 내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아이템 적극적 발굴 및 제시

■ [새정치민주연합 1] 우윤근 위원

- [지위] 現 원내대표

- 우윤근 위원은 친 법원 성향이긴 하지만, 원내대표의 직위로 인하여 상고 법원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동료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지 않고 있음

- [공략 Point]

- 5월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 예상 ⇨ 이르면 4월 국회, 늦어도 6월 국회부터는 보다 행동반경을 넓혀 줄 것을 설득

■ [새정치민주연합 2] 이춘석 위원

- [지위] 예결위 간사 및 전략홍보본부장

- 19대 후반기 예결위 간사에 이어 2015. 2. 당 전체 전략의 기획 및 홍보를 총괄하는 자리인 전략홍보본부장에 임명
- 울산 출신으로서 법원과도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공략 Point]

- 평소의 친분관계를 이용함
- 다만, 박○○ 전북 익산시장 선거범위반 사건(전주지법 군산지원 2014고합 182)에 대한 언급은 신중할 필요 있음
 - 위 사건에서 2015. 1. 박○○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현재 광주고법 전주부 2015노31호로 계속 중에 있음
 - 이춘석 위원이 위 사건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 우리 측이 선불리 위 사건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춘석 위원의 성향에 비추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
 - 다만, 고법에서는 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당분간 사건을 가



지고 있을 필요는 있어 보임

나. 4월 법사위 공청회 대응

1) 지난 3. 2.(월) ‘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분위기

▣ 정책세미나 개요

● 추진목적

- 상고법원안에 대한 찬반 논의를 벗어나,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하여 원점에서 다시 차분히 논의하는 자리

● 주제 ⇨ 상고심 제도 개선

- 주제 1 : 각국 상고제도의 변천과 그 시사점 (이○○ 교수)
- 주제 2 : 상고제도 개선 방안 (이○○ 변호사)

▣ 전반적 분위기 ⇨ **찬반 양론 병행선**

- 상고법원에 대한 찬성(김○○ 교수, 이○ 변호사, 이○○ 논설위원)과 반대(김○○ 검사, 이○○ 변호사)가 서로 팽팽히 대립하면서 보다 발전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2) 4월 법사위 공청회 대응 전략

▣ [기본 방향] **상고법원 기정사실화 + 상고허가제 설파**

- 4월 법사위 공청회는 상고법원 통과 여부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인바, 더 이상 상고법원 찬반에 대한 추상적인 담론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상고법원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상고법원의 설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상고법원의 적정한 규모, 상고법원 법관의 임명 절차,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사건 분류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질의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대법관 증원론을 펼치는 변협 측이나 검찰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병석 위원 등을 통하여 상고허가제 도입이 원칙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도록 함으로써 상고법원안에 대한 비판을 톤 다운 시킬 필요 있음
- [전략 1] **법사위 공청회 조기 개최 추진** ⇨ 4. 10.(금) 또는 4. 17.(금)
 - 최초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이전 공청회 개최 추진
- [전략 2] **공청회 시기 근접하여 대 언론 플레이**
 - 조○○ 교수 등 진보적 인사의 신문기고 ⇨ 상고법원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나, 일부 현재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
 - ‘상고법원 설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정책연구용역 중간결과 기사 게재 ⇨ 구체적 수치 제시
 - ‘상고법원 도입 이후 달라지는 것들’ 특집 기사 게재 ⇨ 구체적 사례 중심
- [전략 3] **대법관 증원론 및 검찰 논리에 대한 반대논리 사전 제공**
 - 민을 만한 법사위원들(ex. 박지원, 서영교 위원 등)에게 기존 공청회나 정책세미나에서 드러난 이○○ 변호사나 검찰의 논리에 대한 반대논리를 말씀자료 형태로 제공
- [전략 4] **공청회장에서의 상고허가제 설파 유도**
 - 이병석, 우윤근, 이춘석 위원 등을 통하여 상고허가제 원칙을 강조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대법관 증원론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
 - 상고허가제로 논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상고법원안의 문제점을 성토했다는 자리가 아닌, 한국형 상고허가제로서의 상고법원의 도입이 대안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전략 5] **상고법원 도입 기정사실화 전략** ⇨ 바람직한 상고법원의 규모와 운용 방법,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사건 분류 방법과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모습 제시



- 현재 상고법원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대한 질의가 오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있음
- 상고법원의 구성안 뿐만 아니라, 충실한 재판 관련 상고심 변론의 확대, 전문재판부에 의한 전문성 강화, 판결 이유의 자세한 기재 등 상고법원의 운영 모습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 제시할 필요 있음

■ [전략 6]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논의 경과 설명**

-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 취지 등과 함께, 4월까지 진행된 논의 결과 및 향후 논의 내용에 대하여도 언급을 함으로써, 상고심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의 구체화를 위하여도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 있음

다. 4월 법사위 공청회 이후 대응

■ ① 1소위 논의 대비 대안 내지 수정안 자체 검토

-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상고법원안의 원안 통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므로, 여러 가지 대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수용 가능한 대안에 대하여 사전에 정책결정을 받아들 필요 있음

☑ **법률신문 3. 16.자 사실 '상고법원 논의에 돌파구는 없다'**

☞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공판사건은 상고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관할하는 방안, 상고법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방안, 상고법원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 방식으로 대법원판사제를 도입하거나 상고법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대법원 상고부 형식으로 두는 방안, 상고법원 설치시 대법관을 축소하는 방안 등의 대안이나 타협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1소위 논의 경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을 것임

■ ②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의결 사항 입법 추진**

- 6월 국회에 이르기까지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법사위원들에게 사법부의 의지를 어필할 필요 있음



■ ③ 임○○ 전문위원 설득 자료 제공

- 임 전문위원은 검찰 측의 논리에 경도되어 있는 상태로서, 더 이상 법원의 구두설명을 듣는 것을 꺼리고 있으므로, 기존 공청회 등의 자료집에 기재되어 있는 검찰 측 의견에 대하여 항목별로 꼼꼼히 반대논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할 필요 있음

■ [變數] 2015. 5.말 법사위 간사 변경 예정 ⇨ 이한성 위원

● [1차 대응] 법사위 간사 변경 방지

- 새누리당 행정실에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 당 지도부는 2014. 5. 홍일표 위원과 이한성 위원이 1년씩 번갈아 간사를 맡기로 정할 당시에도, 향후 이한성 위원에게는 당근으로 경북도당위원장을 주면서 법사위 간사는 맡기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함
- 20대 총선을 위하여 현재 지역구 관리가 절실한 이한성 위원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이한성 위원으로 하여금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게 함으로써, 2015. 5. 이후에도 법사위 간사를 홍일표 위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함

● [2차 대응] 인간성에 호소

- 이한성 위원은 평소 주장이나 소신이 강한 타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중략) 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법사위 간사를 맡게 된다면, 인적관계를 십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설득작업을 펼침으로써, 최소한 적극적인 반대의사는 표시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 있음 <끝>



상고법원 입법 추진 대응전략 TF 5차 회의 보고

2018. 7. 31.

대응전략팀

1. 개요

- 일시·장소: 7. 18.(금) 09:30~11:00, 전정국장 사무실
- 참석자
 - 전정국장, 김○○, 이○○, 조○○, 나○○ 심의관
- 논의 주제
 - 상고법원 관련 의견 수렴 및 홍보 방안 등

2. 주요 논의 내용

가. 공청회(심포지엄) 개최

- 목적 ⇨ 상고법원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우호적 여론 조성
- 논의주제 ⇨ '상고제도 개선을 통한 대법원의 기능 재정립'
 - [제1안] '상고법원제도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 [제2안] '상고제도 개선을 통한 대법원의 기능 재정립'
 - 검토 ⇨ 제2안
 - 상고법원안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상고법원안만을 주제로 한 공청회 개최는 어려움 ⇨ 변협·국회에서 대안을 포함한 공청회 다시 개최할 가능성
 - 대안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상세히 지적할 필요 있음
 - 단, 대안이 주제로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 주제에



대한 전략적 선택 필요

☑ 세션별 주제(안)

- ☞ [제1세션] “대법원 기능 재정립 위한 상고심 개혁 방향”
- ☞ [제2세션] “상고법원안의 구체적 방안”

■ 실시주체 ⇨ 대법원-민소법학회 공동 주최

- [방안] 대법원 단독 주최/ 관련학회 단독 주최/ 대법원-관련학회 공동 주최/ 대법원-대한변협 공동 주최
- 검토 ⇨ 대법원-민소법학회 공동 주최
 - 논의의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학회와 공동 주최 필요
 - 대법관 증원론을 강하게 펴고 있는 대한변협과의 공동 주최는 사실상 어려움
 - 다만, 학술대회가 아닌 공청회를, 대법원과 학회가 공동주최한 전례는 없음(2004년에 대법원, 민소법학회 공동 학술대회를 실시한 바 있음) ⇨ 대안으로 법원행정처 공동 주최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시기 ⇨ 9. 18.(목), 9. 19.(금)

- 국감일정(8. 26. 및 9. 4.), 추석 연휴(9. 8.~9. 10.) 등 고려

■ 장소 ⇨ 서울법원 종합청사

- 준비의 편의성, 접근성, 좌석 규모, 장소의 상징성 등 고려
 - 대법원 청사 16층 회의실 등은 지나치게 내부 행사로만 비춰질 우려

■ 사회자,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

- 사회자 : 1세션 서울중앙 민사수석부장판사 / 2세션 교수
- 발제자
 - 1세션 : 민사소송법학회 소속 교수 ⇨ 민소법 학회에 추천 의뢰
 - 2세션 : 법관



- 지정토론자 : 변호사(변협에 추천 의뢰), 법관, 언론, 시민단체, 검사 정도로 구성

나. 법원 내부 의견수렴 방안

▣ 목적 ⇨ 상고법원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 입법 추진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기 어렵다면, 사법부 내부에서라도 강한 지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의견수렴절차 필요

▣ 방안 ⇨ 코트넷 공지

- 제1안 : 코트넷 공지 방안
- 제2안 : 비공식 수석부장회의 방안
- 제3안 : 5개 고등권역별 간담회 실시방안
- 검토 ⇨ 제1안 건의, 제2안 보류
 - 제2안 수석부장회의의 경우, 법관들에게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법관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 상황은 간담회 등의 실시가 가능할 정도로 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부적절 ⇨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실시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 시기 등에 대하여는 재검토 필요
 - 제3안은 부정적 ⇨ 과거 법관인사위원회 당시 간담회 운영 경험 등에 비추어 제3안의 경우 부정적 측면이 많음

다. 대법원장님 방송출연

▣ 긍정적 고려요소

- 취임 3주년의 특별한 의의 ⇨ 임기의 절반을 마치는 시점으로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
-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있는 이슈화 수단 ⇨ 자연



스럽게 상고심 개선, 상고법원안이라는 화제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

- 대법원장님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갖는 긍정적 이미지 활용

▣ 비판·문제점 극복

- 짙은 언론 노출 및 방송 출연에 대한 신중론 ⇨ 취임 3주년 기념은 방송 출연의 충분하고 특별한 계기로 인정 가능, 공중파 방송 출연은 2012. 9.이 마지막

☑ 대법원장님 방송 출연 전례

- ☞ 취임 직후 ⇨ 2011. 10. 9. KBS 일요진단
- ☞ 취임 1주년 ⇨ 2012. 9. 23. KBS 일요진단, 2012. 9. 25. SBS 현장 21
- ☞ 편협 초청 토론회 ⇨ 2013. 3. 13. KTV 생방송

- 상고법원안을 주장하기 위한 방송출연이라는 오해 야기 우려 ⇨ 상고법원만을 설명, 강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상고허가제 등을 소개하고,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상고법원안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우면서도 현명한 강조 필요

▣ 출연 검토 프로그램 압축

● KBS 일요진단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뉴스 중심인물과의 집중 대담을 통해 뉴스의 본질과 이면의 이야기를 전달함
- 방송 시기: 일요일 08:10(50분)

●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진솔하게 들여다 봄
- 방송 시기: 토요일 08:45(45분)

● SBS 힐링캠프

- 각 분야를 대표하는 게스트들과 함께 그들의 진솔한 인생이야기를 들어봄



- 방송 시기: 월요일 21:15(55분)
- 주요 정치인 출연자: 2012. 1. 박근혜 / 2012. 1. 문재인 / 2012. 7. 안철수

● [대안] 관훈토론회 참석 등

- 신문 보도에 있어서 방송 출연보다 유리

라. 논문 게재

▣ 목적 ⇨ 상고법원안을 위한 이론적 근거 확보, 입법자료로 활용

▣ 논문 주제 ⇨ 상고심 개선 방안, 상고법원안의 세부 내용 연구

● 상고심 개선 방안들의 비교 분석 ⇨ 상고법원의 우월성

- 학술적으로 연구되고 준비되면 가장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사법제도적인 접근, 소송법적인 접근이 양자 모두 필요

● 상고법원안의 세부 내용

- 논문의 충분한 분량만 확보할 수 있다면, 상고심 개선방안에 대한 비교 분석에 더하여 풍부한 내용의 검토가 가능함
- 논문 발표시기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은 존재함

● 단, 상고법원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응 논리는 철저히 준비하되, 오히려 헌법교수들의 역공이 우려되므로 사전 쟁점화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 있음

☑ 상고법원 관련 위헌론 제기 가능성 있는 지점

- ☞ ①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 하○○ 변호사가 위헌론으로 제기한 부분
 - 일부 헌법 학자 중 이를 긍정하는 견해 있으나(정○○),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님을 분명히 함
- ☞ ② 대법원의 최고법원성 침해
 - 상고법원의 판결에 대한 특별재심을 재심적 성격으로 규정할 경우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침해할 소지 있음
 - 고등법원 상고부 추진시 당시 민○○ 대한변협 법제이사가 지적한 부분
- ☞ ③ 상고심 법관을 대법원에 두면서, 대법관이 없는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의 문제

- 대법관이 관여하지 않는 대법원 재판은 헌법 제102조 제2항 본문(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에 반할 수 있음

☞ 4 행정사건 중 일부가 상고법원 관할로 될 경우

- 헌법 제107조 제2항(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권) 위배 가능성

■ 논문 추진 방식 ⇨ 투 트랙

- 1 ㉠ 현직 법관이, ㉡ 상고심 개선방안에 대한 비교 분석을 주제로, ㉢ 8. 31.까지 논문을 작성하여, ㉣ 10월호 법조 또는 인권과 정의에 게재

- 조기 근거 마련 및 법원 입장 피력에 유리
- 상고법원안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부족한 한계
- 후보 법관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신○○ 부장판사 또는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법관

- 2 ㉠ 법원에 우호적인 교수가, ㉡ 상고법원안을 주제로, ㉢ 10.말경까지 논문을 작성하여, ㉣ 12월호 사법지 등 잡지에 게재

- 상고법원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 가능
- 다소 시기를 놓칠 수 있음
- 후보 교수 : 이○○, 전○○ 교수, 유○○ 교수, 하○○ 교수 등 ⇨ 추가 검토 예정

마. 슬로건 등

- 목적 ⇨ 상고법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극대화, 상고법원안의 주요 논거가 반영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필요

- 슬로건 후보 ⇨ 심의관들 전체로부터 공모 예정

- ex) '또 하나의 법원, 상고법원', '반가운 동행, 상고법원', '국민의 결의로, 상고법원', '국민 결의 3심, 상고법원', '상고는 상고법원에서'
- 추가적인 의견 정리 후 부장회의 논의 예정



바. ○○ ○ 판사 서울중앙지법 특별강연

- 목적 ⇨ 법원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 언론보도 등을 통한 간접적 홍보
- 주제 ⇨ 미국의 상고허가제 도입 당시 논의 내용, 상고허가제로 인한 성과 및 문제점 등 미국의 상고제도 관련 내용
- 김○○ 심의관이 이미 미국의 상고허가제 도입 당시 논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 완성

3. 향후 추진 계획

■ 지속적 칼럼 게재

- [기 게재] 호○○ 교수(조선일보), 황○○ 변호사(중앙일보)
- [게재 추진] 박○○ 전 대법관(경향 또는 한겨레), 박○ 변호사, 박○○ 교수, ○○ 전 판사

■ 대법원장님 주최 사회부장 초청 간담회 준비

- 정책결정 및 구체적 일정, 간담회 주제 등 확정

■ 동아일보 특집 기획기사 협의

- 단기간 집중 보도를 통한 대국민 홍보 효과 극대화
- 동아일보와 특집기사 아이템 협의

☑ 현재 논의 중인 특집기사 아이템(안)

- ☞ ① 우리 대법원의 사건 심리 현실 소개, 전 대법관 인터뷰 ⇨ 상고심 개선의 필요성
- ☞ ② 선진 각국의 상고제도 소개, 우리나라 상고심제도의 어제와 오늘 ⇨ 새로운 상고제도의 모색 가능성
- ☞ ③ 대법원의 재판제도 개선 노력, 우리나라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의 역사 ⇨ 상고심 개선은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

■ 대응전략팀 제6차 회의

- 일시, 주제: 미정 <끝>



상고법원 입법 추진 세부사항 진행 현황

2018. 7. 31.

대응전략팀

1. 개요

▣ 상고법원안 입법 추진 위한 세부 사항들의 진행현황임

2. 세부 추진 사항

분류	추진사항	정책결정	추진 상황	담당	
대언론	기자단 개별접촉		완료		
	기고문 / 칼럼	호○○	완료	완료	김○○
		황○○		완료	김○○
		이○○		완료	정책실
		박○		기고문 완성	이○○
		○○ 전		기고문 완성	정○○
		박○○		기고문 의뢰	조○○
		박○○		기고문 수정 중	조○○ 김○○
	동아일보 특집기사	완료 세부항목 미정	협의 중	이○○	
	법률신문 특집기사	완료	협의 예정	정책실	
	대법원장 사회부장 간담회	완료 세부 검토 필요		공보관실	
	대법원장 방송출연	미정		조○○	
	법원행정처장 간담회	완료 세부 검토 필요		공보관실	
	대 내부	법원장 커뮤니티 공지		완료	
		코트넷 공지	미정		이○○
대니전 강연회		미정		서울중앙	
수석부장 간담회		미정		정책실	
여론조사		잠정 결정		조○○	
법관연수		미정		기조실	
대 국민	슬로건	완료	공모 및 검토 중		
	각종 광고 리플릿 제작 등	계획 수립 중		전정국 공보관실	
	공청회	미정		정○○ 정책실	
	논문 게재	미정		정책실	



3. 對 언론

가. 언론사 기자단 개별 접촉

- 각 언론사 기자단을 개별적으로 접촉, 상고심 구조개편의 필요성과 상고법원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 ⇨ 향후 우호적 기사 작성을 위한 기초 작업
- 양형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 동아일보, 중앙일보, 대검기자단과 각 간담회 개최

나. 기고문 또는 칼럼 게재

■ 방향

- 초기 : 대법관 증원론 등 대안론을 비판, 부정적 여론 움직임 차단
- 중기 : 상고법원안 설명 및 지지

■ 기고문 게재 완료

- 호○○ 교수(조선일보) ⇨ 상고허가제 주장
- 황○○ 변호사(중앙일보) ⇨ 상고법원 신설이 가장 현실적
- 이○○ 변호사(법률신문 사설) ⇨ 상고법원 도입은 전합 활성화, 대법원 변론 활성화, 필수적 변호사 제도 도입, 심불 폐지와 함께 논의 되어야

■ 향후 기고문 또는 칼럼 게재 예정

- 박○ 변호사 : 작성 완료, 조선일보 예상
- ○○ 전 판사 : 작성 완료, 동아일보 예상
- 인터뷰보다 기고문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함
- 박○○ 전 대법관 : 의뢰 완료, 한겨레 또는 경향 예상



- 박○○ 교수 : 수정 중, 문화일보 예정(미섭외)

다. 동아일보 기획기사 추진 : 협의 중

▣ 특집기사 아이템 : 협의 중

- 총 3일에 걸쳐 기획기사 구상 중
 - 1회 : 대법관의 일상 등 상고심 현황 소개
 - 2회 : 우리나라, 외국의 상고제도 소개
 - 3회 : 대안의 모색 - 상고법원안
- 인터뷰 대상자 선정 필요
 - 현직 대법관 결정 및 인터뷰 일정 조율
 - 이번 주 목요일까지 동아일보측에서 인터뷰 대상자 리스트 제공하기로 함
- 실무 협의 : 최○○ 전정국장, 이○○ 심의관 - 정○○ 팀장
 - 자료 제공 : 3심제 관련 자료, 일본 상고수리제
 - 사진 촬영 관련 협조 요청 : 대법원 청사, 전합 합의실 등
 - 1주일 2-3회 지속 실무 협의 중

▣ 7월 28일경까지는 대강의 콘티 확정 예정

▣ 8월 11일 ~ 14일 기간 기사 예상

라. 법률신문 특집 기사 추진 : 협의 예정

- ▣ 전문가를 위한 특집 기획 추진, 기획 특집에 대한 섭외는 완료
- ▣ 담당 기자 선정 : 신○○ 기자

마. 대법원장 주최 각 언론사 사회부장 초청 간담회 : 계획 수립 필요

- ▣ 대법원장 취임 3주년 기념 공식간담회에서 임기 중반 중요정책 방향과 함께 상고법원안을 자연스럽게 설명



▣ 간담회 후 공관 만찬 개최

▣ 추진시기 : 9월 10일 전후

바. 대법원장님 방송출연 : 정책결정 필요

▣ 방송출연은 긍정적 검토 가능

▣ 출연 검토할 프로그램 압축

● KBS 일요진단

●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 SBS 힐링캠프 : 주 시청층이 20대라는 한계

▣ 대안으로, 관훈토론회 참석 등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사. 법원행정처장 주최 각 언론사 법조팀장 초청 간담회 : 정책결정 필요

▣ 법원행정처장 기자간담회 개최

● 각 언론사 법조팀장 초청

● 상고법원안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

▣ 간담회 후 만찬 개최

▣ 추진 시기 : 9월 하순경

▣ 참고 : 대법원장님 법조팀장과의 등산간담회 9월 21일 예정

4. 對 내부 구성원

가. 초기 대응

▣ 법원장 커뮤니티 안내

● 건의문 발표 직후 법원장 커뮤니티에 상고법원안의 주요 골자 또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개괄적 안내



나. 향후 추진

■ 코트넷 공지 : 정책결정 필요

- 코트넷 주요 공지사항에 사법정책실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명의로 상고심 개선 진행 상황을 알림
- 공지 내용
 - ①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건의내용
 - ② 현재 검토 중인 상고심 개선방안의 소개
 - ③ 향후 상고심 개선 절차에 대한 안내

■ 비공식 수석부장 간담회

- ① 법관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② 법관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주지 못함 ⇨ 당초 의도한 내부 의견 수렴 및 방안 전파라는 목적을 살리기 어려움
- 향후 상고심 개선 추진 상황에 따라 실시 여부와 실시 시기를 탄력적으로 검토

■ ○○ 전 판사 강연회 : 서울고등 또는 서울중앙에 전달 필요

- 서울고등 또는 서울중앙에 위임하여 추진

■ 전체 법관 상대 설문조사 : 설문조사 문항 준비 필요

- 전체 법관들에게 상고법원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여 대외적 설득 근거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설문조사 자체를 상고법원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설득의 한 과정으로 활용할 필요
 - 7월 대법관 행정회의 이후 구체적 설문 내용 준비
- 추진 시기
 - 8월 대법관 행정회의 이후 일주일 동안



▣ 계속적 정보 제공

- 코트넷 게시판 공지사항에 확정된 상고법원안의 주요 내용 게시
- 경력별 연수법관 상대로 사법행정현안 함께 상고법원안 진행 상황 설명

5. 對 국민

가. 슬로건 결정

▣ 이미지 메이킹, 캐치프레이즈 선정

- 쉬운 어휘 + 긍정적 이미지
- 홍보심의관실 전문가 활용, 심의관들에게 공모 중

나. 각종 광고 검토 : 세부 계획 수립 필요

- ▣ 홈페이지 팝업(배너)
- ▣ 각급 법원에 홍보용 리플렛, 소책자 등 제공
- ▣ 네이버 광고, 명함 제작 등

다. 공청회 : 정책결정 필요

▣ 논의주제

- 1세션 : 대법원 기능 재정립 위한 상고심 개혁 방향
- 2세션 : 상고법원안의 구체적 방안

▣ 실시 주체 : 민사소송법학회와의 공동 주최

- 민소법학회의 10. 1. 국제민사소송법 심포지엄과 별개로 주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학술대회가 아닌 공청회를, 대법원과 학회가 공동주최한 전례는 없음 ⇨ 법원행정처 공동 주최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2004년 대법원 민소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실시한 바는 있음

▣ **장소 : 서울법원 종합청사**

▣ **시기 : 9월 18일 무렵**

● 국감일정, 추석 연휴 등 고려시 불가피

▣ **사회자, 발표자, 지정토론자**

● 사회자 : 1세션 서울중앙 형사수석부장판사 / 2세션 교수

● 발제자

- 1세션 : 민사소송법학회 소속 교수 ⇨ 민소법 학회에 추천 의뢰

- 2세션 : 법관

● 지정토론자 : 변호사(변협에 추천 의뢰), 법관, 언론 시민단체, 검사

라. 논문 게재 : 정책결정 및 논문 작성자 선정 필요

▣ **2가지 방식 논문 병행 추진**

▣ ① ㉠ 현직 법관이, ㉡ 상고심 개선방안에 대한 비교 분석을 주제로, ㉢ 8. 31.까지 논문을 작성하여, ㉣ 10월호 법조 또는 인권과 정의에 게재

● 후보 법관

- 고법부장 : 김○○ 부장판사, 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 지법부장 : 신○○ 고법판사, 김○○ 부장판사

-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법관

▣ ② ㉠ 우호적인 교수가, ㉡ 상고법원안을 주제로, ㉢ 10.말경까지 논문을 작성하여, ㉣ 12월호 잡지에 게재

● 후보 교수 : 이○○, 전○○ 교수, 유○○ 교수, 하○○ 교수 등 ⇨ 추가 검토 예정

6. 주요 기관별 대응 전략



가. 對 國회

1) 전략적 맞춤형 설명에 의한 설득작업 + 논의 촉발(이슈화)

▣ 개별적 설명·설득 중요

- 특별한 이슈가 있어 국회가 주도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이 아닌 만큼, 전체적으로 통일적 당론이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 ⇨ 개별적 설득작업 중요
- 특히 법사위 의원들의 예상 반응을 고려한 설득 실행

분류	의원	예상 반응
검찰 출신	김도읍, 김진태, 박민식, 이한성 (여 4), 임내현(야 1)	법무부, 검찰과 입장을 함께할 가능성 높음
변호사 출신	이상민, 전해철, 우윤근, 이춘석 (야 4)	변협, 참여연대와 유사한 입장 예상
판사 출신	홍일표(여 1), 서기호(야 1)	법원 입장 설득 가능
비법조인	노철래, 이병석, 정갑윤(여 3) 서영교, 박지원(야 2)	당론, 개인적 영향, 이해관계, 법원과의 관계 등에 따라 입장 달리할 가능성

- 법사위 위원 뿐 아니라 원내 지도부 설득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원내 지도부 의견은 소장파 의원들에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음)
- [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판사 출신)
- [야당] 박영선 원내대표, 박범계 원내대변인

▣ 맞춤형 설명 전략 수립

- 주요 대응 논리 개발 과제 ⇨ 쟁점별 대응 보고서, 계속 개발
- [대안에 대한 반박]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 ⇨ 대법관증원, 대법원 이원적 구성안의 중대 단점 지적하여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설득
- [비판에 대한 대응] 국민의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 침해, 사실상 4심제, 분



류기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비판에 대한 반박

- [정서적 반감 극복]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대법원에만 유리한 제도 개선이라는 반감 극복

● **상고법원 설치 시 장점 개진(국회의원 입장)** ⇐ 계속 개발

- ① [對 여당] 상고법원, 대법원 재판은 경륜있는 상고법관, 대법관의 합의를 전제로 함 ⇨ 대법관증원, 대법원 이원적 구성안보다 상고심 법관의 '개인적 성향'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결론을 막고 안정 속에 점진적인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 [對 야당] 상고법원 설치를 통해 대법원의 실질적인 다양성 보장, 진보·소수자 성향 대법관의 자유로운 소수의견 개진 가능성 및 판례 변경 가능성 보장 ⇨ 대법원의 정책기능 강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두텁게 보장
- ② 상고법원의 충실하고 빠른 심리를 통해 일반 상고사건에서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 ⇨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면서 더 충실하고 빠른 심리 가능
- ③ 상고법원 운영 방법에 따라서 평생법관제 정착 가능 ⇨ 전관예우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2) 입법 추진 형태 및 시기 결정 + 입법추진전략 재점검

▣ 입법추진 형태 ⇨ 여야 간사 합의안

- 최종 대법원안을 여야 간사 합의안의 형태로 제시
- **현 단계부터 정치권에 사법부 방안의 장점을 설득하면서 입법 가능성 타진**
- **정치권 입장 반영하면서 합의안 제출 추진**

[다른 입법 형태의 난점]

- 의원 입법 : 심급 구조와 사법제도 근간에 관련된 법안 ⇨ 개별 의원 발의하기에는 비중이 큼
- 국회 입법의견 : 입법 추진 동력에 한계 존재, 입법의견에 의한 법률 개정 사례 없음



○ 정부입법 : 대법원안의 유지가 어렵고 신속 입법 곤란

나. 對 변협

- 변협, 서울변회, 민변 등의 상고법원 관련 움직임 지속 확인 필요
 - 대한변협 상고법원 TFT 진행 상황 등
- 개별 접촉 및 설득
 - 대한변협회장, 부협회장, 대변인 등, 서울변회 회장
- 비공식적 자리에서 상고법원안에 따른 변호사업계의 유리함 부각
- 입법 초기 단계에서 대한변협과의 전략적 협조관계 구축 ⇨ 대승적 차원에서 대한변협과 필수적 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체 구성 여부 검토
- 상고법원안 반대 그룹에 대한 집중 설득 및 카드 활용
 - 대한 변협, 서울 변회 ⇨ 심리불속행 범위 대폭 양보
 - 민변 ⇨ 대법원 개선의 시작임을 설득, 향후 추가적 개선 노력 약속

다. 對 법무부

- 법무부 간부진과 실무진에게 상고법원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유도 + 대응검찰청 동시 추진 제안 검토
- 검사 입장 배려한 제도 반영 제안
 - 상고법원안에 대한 법무부 비판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
- 법무부 협상 카드 활용
 - 법무부가 강하게 반대할 경우, 법무부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제안을 하여 중립적 입장으로 선회할 것 요청



라. 각 유관기관별 상황 점검 및 대응태세 확립

■ 국회 ⇨ 김○○ 판사

- 이병석, 정갑윤, 노철래 의원 등 지속적 사전 설득 작업 필요

■ 언론 ⇨ 공보관, 홍보심의관

■ 시민단체(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 대한변협, 서울변협 ⇨ 김○○ 심의관(정책실)

■ 법무부 ⇨ 기획조정실장

■ 민사소송법학회, 공법학회, 헌법학회 등 ⇨ 반대 목소리 등 꾸준히 예의주시할 필요. [끝]



공청회 이후 상고법원 입법 추진 계획

2014. 9. 26.

사법정책실

1. 대언론 등 홍보

가. 기고문

- ▣ 공청회 전 : 중앙지 9개, 지방지 8개 및 법률신문
- ▣ 공청회 이후 기고 계속

	기고자 후보 그룹1	기고자 후보 그룹2
변호사	신○○, 이○○(전문위원), 진○○, 홍○○, 송○○,	이○○(자문위원)
법학 교수	함○○(민소), 최○○(형법), 김○○(민법), 한○○(형법)	- 호○○, 정○○, 손○○, 이○○, 윤○○, 김○○, 김○○ - 하○○, 조○○, 이○○, 이○○ - 윤○○, 이○○, 정○○, 이○○ - 신○○(자문위원)
기타	○유 (미연방법원 판사)	오○○(자문위원), 이○○(자문위원), 곽○○ 가정법률상담소장(자문위원)

나. TV 방송

- ▣ 민○○ 대법관님 출연(SBS)

다. 슬로건 및 SNS 이용

- ▣ 내부 슬로건 공모 결과 중 선택 / 외부 전문업체 의뢰
- ▣ 네이버 브랜드 검색(9월말부터)



- ▣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통하여 상고법원안 내용 홍보 강화

라. 홍보책자

- ▣ 9/26 업체 선정 ➔ 10월 말경 완성 목표

마. 논문 발표

- ▣ 민사소송법학회 학회지 - 이○○ 교수 12월 논문 게재 예정
- ▣ 형사법 학회지 논문 게재 추진

2. 외부 기관 설득 및 동향 파악

가. 변호사단체

단체	방안
대한변협	연계 방안 모색(설명회 개최 등)
서울변회	10월 초 간담회 및 이후 지속적 우호 관계 유지
지방변호사회	각 지방법원 단위별 홍보 및 설득 작업
기타 변호사 단체	시변, 헌변, 민변, 여성변호사회 동향 파악

- ▣ 법원장 대상 상고법원안 설명회(서울권/대전권으로 2회) 검토 중

나. 학계

- 법률안 의견 조회 대상 학회 위주 회장 및 간사 설득
 - 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학회, 민사소송법학회, 민사집행법학회, 민사법학회, 가족법학회
- 지방대 법전문 교수들과의 우호 관계 확보
 - 지방변호사회의 반대의견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세력으로 확보



다. 법무부

- 대검 기조실 및 법무부 제도개선기획단
- 사전 설명 및 설득 작업(검찰 출신 의원들에게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도록 사전 대응)

라. 기재부

- 소요 예산 분석 및 설득

마. 헌법재판소

- 파견 판사 등 통하여 상고법원안에 대한 의견 및 동향 파악

3. 법원 내부

가. 법원 내 설명 및 홍보 계속

- ▣ 상고법원안 설명자료 및 공청회 자료 등 게시
- 제도 개선에 소외감 들지 않도록 의견 제시 기회 제공 등 계속 필요

나. 상고법원 도입 기대 분위기 조성

- ▣ 공개변론 개최 및 전합 판결 다수 선고 등 ⇨ 대법원의 의의와 기능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필요

4. 대 국회

가. 입법조사관 등 상대 설명 및 설득

- ▣ 법사위 전문위원 및 조사관
- ▣ 각 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 ▣ 입법조사처 조사관



- 이슈와 논점 발간(발의 직후 10월말 또는 11월초)

나. 법사위원장 주최 정책토론회

- ▣ 진행 상황 점검
- ▣ 법원 우호적 인사 추천
 - 이○○, 하○○, 신○○ 등

5. 법률안 발의

가. 내부 법률안 확정

- ▣ 10월 중순경 대법관회의
 - 1차 보고 ⇨ 10월 둘째 주
 - 예비적 ⇨ 소회의 및 2차 회의

나. 여야 간사 공동발의 합의 및 참여 의원 확보

다. 공동 발의 의원실과 협조

- ▣ 법률안 내용 설명 및 일정 협의

라. 10월 하순경 법원안 공개 발표 및 발의

- ▣ 10월 중순 대법관회의 법률안 확정 후

6. 로드맵

	9월말	10월			11월	12월
		초순	중순	하순		
법안 발의	법률안 보완	대법관회의	법원안 공개 발표	발의		
국회		공동발의 의원실과 협조				



		발의 참여 의원 확보		
		법사위원장 정책토론회		
변호사	서울변회 간담회	지방변회 등 접촉		
학회	회장단 및 간사진 설명, 설득			의견조회
논문 등		이슈와 논점		민소법 학회지
내부	코트넷 이용 상고법원안 설명 공개변론 / 전합 선고 등 분위기 조성			
대 국민	네이버 브랜드 검색 / SNS			
	기고문			
		슬로건		
		홍보책자 배포		



[참고] 기고문 현황

1. 중앙지

조선	중앙	한겨레	매일경제	문화	경향	동아	내일	한국경제
7/10 호○○	7/14 황○○	7/29 박○○	8/4 박○	8/13 박○○	8/18 이○○	8/28 ○○전	9/3 하○○	9/15 전○○

2. 지방지

1	2	3	4	5	6	7	8	9	10
대구	부산	인천	광주	수원	울산	전주	제주	대전	춘천
함○○ 경북대총장	김○○ 교수	김○○ 교수	송○○ 교수	윤○○ 변호사	이○○ 변호사	김○○ 변호사	장○○ 교수(변)		
9/25 매일신문	9/24 국제신문	9/5 인천일보	9/22 광주일보	9/23 경인일보	9/24 경상일보	9/22 전북일보	9/26 제민일보		

▣ 대구, 부산은 9월 또는 10월경 1회 추가 게재 예정

- 경북대 법전원 이○○ 교수(행정법) - 영남일보
- 부산 송○○ 변호사 - 부산일보

▣ 울산법원에서 부탁한 부○○ 영산대 총장은 필요한 시기에 중앙지에 게재 예정

▣ 대전, 춘천은 기고자 섭외 중

최근 법조계의 화두는 단연 상고법원이다.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국민들이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책임감 있는 의견들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2013년 여름부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꼬박 1년에 걸친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에 직접 참여하였다. 상고법원 제도 건의문 의결까지 전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대법원 개최 공청회 좌장까지 맡았던 사람으로서 느꼈던 몇 가지 점을 진솔하게 말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문위원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한 여러 대안들 중 상고법원 제도가 국민을 위하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이면서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건의문을 의결하였다는 점이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를 찾고자 1년여에 걸친 치열한 토론을 벌였던 것이었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법원과 대법관의 권위’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고 언급된 바조차 없다.

대법관이 모든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지 않는 데 대한 위헌성 주장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고법원에 대한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절차가 없어 국민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의 주장인데, 이는 그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상고법원 제도의 합헌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한 바 있다. 선진 각국은 상고허가제를 채택하여 대부분 사건을 아예 최고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지만 위헌이나 국민주권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된 적은 없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사건의 최종심을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대법원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심급은 입법사항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상고사건 중 일정한 사건만 대법원이 재판하고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재판하게 하는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자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필자를 포함한 여러 위원들은 이상적으로는 상

고허가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역량을 집중하여 전원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지혜의 집합체로서 결론을 도출하고, 사법 효율을 고려하여 나머지 사건의 상고는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수십 명의 대법관이 모든 상고사건을 나눠서 처리할 수밖에 없고, 전원합의체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대법관 증원안은 의미있는 대안으로 논의될 수 없었다.

그러나, 상고허가제는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고려, 특히 이미 시행된 바 있고, 국가 권력의 변동기에 전격 도입되었다가 폐지되는 등 태생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특수성 때문에 이를 다시 새로운 제도로 의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차선택으로 여러 장점을 갖고 있는 상고법원 제도의 도입을 의결하게 된 것이다.

상고사건의 성격을, 국민 일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질서를 형성할 사건과 개인적 권리의무관계가 판단 대상일 뿐인 사건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의 발전적 해결을 도모하는 상고법원 제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중중원 지위 인정 여부, 통상임금의 범위 등 전자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관 전원이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를 거쳐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개별 사건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과중했는지, 차임 연체가 임대차계약 해제 요건에 해당했는지 등 후자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상고법관이 효율적 심리를 통해 충실한 권리구제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되고, 상고심 판결문 이유도 더 자세히 기재되어 국민들의 불만이 크게 해소될 수 있다.

상고제도 개선 논의는 참으로 오랜 동안 지지부진 계속되어 왔다. 깊은 연구와 고민 끝에 상고법원안이 발의된 이번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이뤄 국민을 위한 선진 사법의 토대를 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상고법원 제도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방안이고, 그 틀을 기초로 논의를 전개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믿는다.

법사위원 대응전략

2015. 3. 21.

대응전략 TFT

1. 개요

가. 법사위 대응전략

■ 기본 전략

- 상고법원 기정사실화 → 임명절차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질의 유도
- 대법관증원론 등에 대한 반대논리 사전 제공(홍일표, 박지원 등)

■ 4월 공청회 이전 법사위 의원 접촉 방향

- 찬성 의원 → 지지 확인 + 확실한 부탁 + 반대 의원 설득 부탁
- 유보 의원 → 개인별 맞춤 접촉 후 적극적 설득으로 찬성 유도
- 반대 의원 → 반대 의견의 적극적 피력 방지

■ 접촉 시 유의사항

- 의원별 관심 포인트 숙지 → 반대논리에 대한 구체적 답변 갖고 접촉
- 접촉 루트가 행정처 실장급 이상이 아닌 경우, 주요 논리 숙지 필요

■ 사후 조치

- 목표 : 해당 의원을 최대한 찬성 또는 유보로 설득
- 차선책 : 반대 · 유보의 주요 이유 확인 → 행정처(사법정책실)에 전달
→ 공청회 이전에 진술인 또는 의원 측에 관련 자료 제공

나. 고공 전략

- 양당 대표 . 원내대표에 직접 관심 요청 → 필요성, 심각성 인식 촉구
- 공청회 무렵 분위기 조성

- 언론 기고문 /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유도 (※ 유승민 의원을 통한 논의)

2. 의원별 맞춤 전략

가. 여·야 대응전략

▣ 여당 → 검찰 출신 의원이 핵심

- BH·법무부 의견이 변수 → 홍일표 및 당 지도부, 중진에게 설득 부탁
- 기타 의원 : 적극 반대 이유 없음 → 긴밀한 접촉으로 상고법원안이 가장 타당한 제도임을 집중 부각 → 찬성 유도

▣ 야당 → 민변과 연계성 강한 親盧 의원이 핵심

- 변협, 민변, 시민단체 주장에 대한 반대 논거를 들어 적극 설득
- 상고법원안이 가장 타당한 결론임을 집중 부각

나. 로드맵

	3월		4월			5월		6월	
	중순	하순	초순	중순	하순	초순	중하순	초순	중하순
입법 활동		의원 개별 접촉·설득		4/10 공청회	소위 논의				소위 통과
언론	3/23 내일	경향	법률 조선	법의날기념 인터뷰 등	기고 계속 (중앙지+지방지)			용역결과 특집기사	
법원 내부	3/23 게시판 개설			공청회 결과 게시					

- 의원에 따라 2, 3회 접촉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고려 필요
- 공청회 이전 공청회 진술인 접촉 필요
- 연구용역 진행 : ① 상고법원 도입의 경제적 효과
② 상고제도 개선의 헌법적 쟁점 연구

다. 반대 의원 (5명)

김진태 (여당)	입장 · 중요성	① 미발의 · 1소위 ② 현재 반대 → 공청회 등 논의 후 최종 결정 예정 ③ 끝까지 무조건 반대는 아님 (법무부 의견 변수 가능)
	특징	① 소신, 정치색 분명 ② 의견 표명한 적 없음
	대응전략	① 입장 확인 ② 반대의견 고양되지 않도록 설득 ③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및 현실적 대안 부재 설득
	접촉 루트	① 인적 : 민○○ 대법관, 정○○ 고등부장 ② 동기 : 홍○○, 이○○, 김○○ 고등부장 ③ 지도부(김무성, 유승민), 중진(이병석, 정갑윤), 홍일표 의원 설득 병행 필요
	지역구 현안	① 강원디자인센터 춘천 유치 활동 등
	대화 소재	① 아베 총리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관련 미 하원 로이스 외교위원장 면담(日 과거사 사과, 반성 촉구) - 3/16~3/21 방미 결과

김도읍 (여당)	입장 · 중요성	① 미발의 · 1소위(초선) ② 반대
	특징	① 원내부대표 로 지도부 지시 잘 따르는 스타일 ② 합리적 이라는 평가 ③ 주요 반대 논리 ㉠ 상고법원 지역 미설치 → 부산변회 주장과 일치 ㉡ 사건 분류 기준 모호 ㉢ 힘 있는 이들만 대법원 재판받을 가능성 ㉣ 4심제 ㉤ 재판받을 권리 침해
	대응전략	① 주요 반대 배경 확인 필요 - 법무부 · 부산변회 의견 중 초점 대상 확인 ② 지부 설치에 관한 입장 ㉠ 상고법원 도입과 동시 설치 어려움 ㉡ 도입 후 여러 가능성 있음 ③ 상고법원안 외에는 지역에서 상고심 재판 가능한 방법 없음 ④ 지역 접근성 확보 관련 법안 필요시, 발의권 부여
	접촉 루트	① 동기 : 김○○ 지법부장(대학 동기, 친분 미확인) ② 권성동 의원과 친분 ③ 지도부(김무성, 유승민), 중진(이병석, 정갑윤), 홍일표 의원 설득 병행 필요
	지역구 현안	① 폐기물매립지 건립 예정에 대한 주민 강력 반발
	대화 소재	① 아베 총리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관련 미 하원 로이스 외교위원장 면담(日 과거사 사과, 반성 촉구) - 3/16~3/21 방미 결과 ② 대표 발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3월 본회의 통과

이한성 (여당)	입장 · 중요성	① 미발의 · 1소위 (하반기 법사위 간사 가능성 有) ② 반대 → 적극 설득 시 찬성 변경 가능
	특징	① 주장, 소신 강하지 않음 ② 인간성 좋음. 정에 약하다는 평가 ③ 주요 반대 논리 ㉠ 재판받을 권리 관련 위헌 소지 ㉡ 법관 임용절차 강화로 사법부 신뢰 강화 우선
	대응전략	① 정서적 접근 → 최소한 적극 반대하지 않도록 설득 ② 재판받을 권리 → 현재 결정례 등 설명 ③ 필수적 대법원 심판사건 중 형사사건 비중 늘리는 방안 제시 → 공청회 질의 유도
	접촉 루트	① 처장님 등 ② 홍일표 의원과 친밀 ③ 중진(이병석, 정갑윤) 통한 설득 부탁 필요
	지역구 현안	① 2015년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 개최 추진 중 - 국비 850억 확보
	대화 소재	① 2014년 국회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정 - 민생정치연구회(대표 이한성) 등 16개 ②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국감우수의원 3년 연속 선정

전해철 (야당)	입장 · 중요성	① 미발의 · 1소위 ② 법안 취지 공감 → 적극 설득 시 찬성 변경 가능
	특징	① 대법원 구성 다양화 + 하급심 강화와 병행 사고 ② 사안에 따라 원내대표 의원도 따르지 않을 정도로 고집 있음 ③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 ㉠ 기본적인 예우 필요 ㉡ 설득이 쉽지 않은 스타일
	대응전략	① 상고심 개선 시급성 설명 ② 다양화 ㉠ 참여정부 당시 다양화 상황 및 취지에 공감 ㉡ 다양화에 대한 지속적 노력 약속 ㉢ 상고법원 설치 시 대법원 역할 변화로 다양화는 불가피함을 설명 ③ 사실심 충실화 ㉠ 위원회 논의사항 + 증거채부기준 등 시행결과 설명 ㉡ 긍정적 반응 시 제안 가능 사항 - 사실심 충실화 방안 관련 입법 발의 - 사실심 충실화 방안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④ 설득 전략 성공 → 서기호 의원 설득 거점 활용
	접촉 루트	① 동기 : 노○○ · 유○○ 고등부장 ② 처장님 만찬 제안 등 ③ 유의점 : 박지원 의원과 소원함
	지역구 현안	① 지하철 新안산선 조기 착공 및 노선 연장 추진
	대화 소재	

서기호 (야당)	입장 ·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발의 · 1소위 ② 적극 반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당히 논리적이거나 우유부단한 면도 있음 ② 설득 쉽지 않음 ③ 주요 반대 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 법관 자리 늘리기 ㉡ 대법원장 인사권 강화 → 민주적 정당성 ㉢ 4심제 ㉣ 상고 증가 원인, 대처방안에 대한 근본적 검토 ㉤ 하급심 강화를 통한 사법부 신뢰회복이 선행조건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회 접촉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 역풍 우려 ② 공식 접촉을 통한 정면 대응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접촉 방안 : 심의관 → 실장급 ㉡ 직접 접촉 방안 : 실장급 ③ 반대 논리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고심 개선 필요성 · 시급성 ㉡ 임용절차 개선 → 발의한 관련 법안에 공감 ㉢ 사실심 충실화 위원회 경과 등 설명
	접촉 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원(신중 필요) : 이○○ 판사, 이○○ 전 판사 ② 전해철 의원(설득 성공 시) 활용 → 불이익변경금지 사례 - 야당정책연대를 통한 목표 출마 준비
	지역구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총선 지역구 출마 적극 고려 중(목포)
	대화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법기관 청소근로자 처우개선 위해 시중노임단가 적용 주장 → 대법원 청소근로자 30억 증액(예산 예비심사) → 본회의에서 5억만 증가

라. 유보 의원 (6명)

노철래 (여당)	입장 ·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발의 ② 유보 → 적극 설득 시 찬성 변경 가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법조인. 정치적 감각 뛰어나다는 평가 ② 보좌진 작성 서면 넘어선 질의 없음 → 보좌진 설명·설득 위해 집중 공략 필요 ③ 주요 유보 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변협 설문조사 결과 대법관 24명 증원 지지 ㉡ 하급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법원, 형사합의사건 증대 필요 - 부장판사 1심 배치 증대 ㉢ 재판받을 권리 관련 위헌 소지 ㉣ 4심제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한변협 설문조사 결과 설명 → 오해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대상이 '일반 국민'이 아니라 '변호사'임 - 심불 폐지 전제 상고법원안 59% 찬성 ② 사실심 충실화 위원회 논의사항 집중 설명 ③ 대법관증원론, 獨·佛 상고심 자료 충분히 제공 ④ '조정법원' 의도 파악 후 공감 표시 및 활용 검토
	접촉 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홍일표 의원과 친밀 ② 중진(이병석, 정갑윤) 통한 설득 부탁 필요 ③ 친박연대 : 박선영 前 의원 통한 접촉
	지역구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내 고교 등 학교 증설 추진
	대화 소재	

김재경 (여당)	입장 · 중요성	① 발의. 3선 의원 ② 최근 법사위 입성
	특징	① 親 법원
	대응전략	① 법안에 대해 조기에 적극 설명 필요 - 발의 후 불거진 여러 쟁점에 대한 설명 ② 찬성 의사 확인 ③ 공청회 발언 전략 → 상고법원 도입 효과 질의
	접촉 루트	① 실장급 이상 ② 학맥 : 김○○ · 임○○ 고등부장
	지역구 현안	① 최근 국가항공산업단지로 지정 (진주, 사천) ② 진주지원 이전
	대화 소재	① 윤리특별위원장 겸임 ② 한국언론사협회 2014년 우수국회의원 대상(3인)

이상민 (야당)	입장 · 중요성	① 미발의 · 위원장 ② 명시적 의견 표명 없었음 - 사석에서 홍일표 의원이 발의 후 설득 활동에 소극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적 있음
	특징	① 반대의사 갖고 있더라도 직책상 명시적, 적극적인 의사 피력 어려움 → 공청회에서 찬성 분위기가 압도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김영란법 사례 ② 직책에 맞는 법안 처리 명분 필요 - 상고심 지체로 인한 국민의 손해 규모 - 공청회 사회자로 가능한 발언 제공
	대응전략	① 상고심 개선 필요성 ② 국민적 관심 : 소송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 - 가치분 부동산 가액 합산액 산정 가능 여부 검토 (전정국, 사법등기국) ③ 국민에 대한 혜택 - 상고법원 설치의 경제적 혜택(정책연구용역)
	접촉 루트	① 동기 : 남○○ · 전○○ 부장 ② 실장급 이상
	지역구 현안	① 특허 관할 집중 법안 통과 (4월 국회 예상) - 정갑윤 안과 병합 처리 예상
	대화 소재	① 김영란법 심사 시 엄청난 여론 부담에도 불구하고 반대 소신으로 주목받은 것에 자부심 ② 집단소송제에 큰 관심

우윤근 (야당)	입장 · 중요성	① 미발의 · 원내대표 ② 명시적 의견 표명 없었음
	특징	① 親 법원 but 직책 상 적극 지지 · 설득하지 않음 ② 5월 경선 불출마 예상 → 행동 반경 확대 가능
	대응전략	① 지지 의사 확인 후 동료 의원 설득 요청 → 서영교 의원(원내부대표) 설득 부탁 ② 공청회 발언 전략 ㉠ 상고심 개선 필요성 강하게 주장 ㉡ 사개특위 경험 중심으로 과거 논의부터 대안 부재 설명
	접촉 루트	① 실장급 이상
	지역구 현안	① 2014. 12. 지역구(광양) 숙원인 세풍산단 '기능성 화학소재단지' 유치 성공 (국비 945억 확보)
	대화 소재	

이춘석 (야당)	입장 · 중요성	① 발의 · 예결위 간사 · 당 전략홍보본부장 ② 유보 → 적극 설득 시 찬성 변경 가능 → 야당 설득 거점 의원
	특징	① 논리적 · 합리적이라는 평가 → 타 의원들에 대한 설득력 높음 ② 親 법원. 변호사. 현안에 대한 이해도 높음
	대응전략	① 지지 의사 확인 ② 공청회 발언 전략 ㉠ 상고법원 반론에 대한 이론적 설명 ㉡ 위헌론에 대한 확실한 견제 → 임명절차 개선방안 구체적 제시 가능 - 상고법원 법관 추천위원회 등 논의 유도 ㉢ 대법관증원론 비판
	접촉 루트	① 실장급 이상
	지역구 현안	
	대화 소재	① 예결위 간사 · 당 전략홍보본부장(2015. 2.) 임명 ② 2014년 의정대상 수상(18명) - 사이버 검열 논란 이슈화 등

서영교 (야당)	입장 ·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발의 · 1소위 ② 유보 → 적극 설득 시 찬성 변경 가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법원 구성 다양화 주장 but 대법관증원 반대 분명 ② 親 법원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지 의사 확인 ② 공청회 발언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관증원론에 대한 저격수 → 반대 입장 확고히 이론적 뒷받침 필요 ㉡ 상고심에 대한 국민 불만 → 법원 측에 질의 ㉢ 상고심 개선 필요성에 대한 확신 부여 ③ 다양화에 대한 공감 및 전망 설명
	접촉 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해철 의원 영향력 大 ② 원내지도부인 우윤근 의원 영향력 大 ③ 학맥 : 노○○ 부장(친분 미확인) ④ 최후 : 박○○ 변호사(울촌) 입장 확인 후 활용 - 집유로 석방한 재판장. 2012년 국감에서 감사인사
	지역구 현안	
	대화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구황산테러 피해자 측과 공동기자회견 → 대법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재항고 사건 처리 시 강력 반발 예상 ② 형소법 개정안(공소시효 폐지) 4월 국회 처리 추진 → 법원 지지 희망

마. 찬성 의원 (5명)

홍일표 (여당)	입장 · 중요성	① 대표발의 · 간사 · 1소위 ② 적극적인 역할 · 활동 요청
	특징	① 발의 후 대법원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의문 보유 - 대법원의 개별 접촉 및 설득 노력 보여줄 필요 ② 국회 아닌 곳에서도 상고법원 이슈화 역할 ③ 법원 논리 모두 정리하여 제공 - 법안에 대한 확신 강화 + 설득 준비 철저
	대응전략	① 친소관계 이용 의원 개별 설득 요청 - 노철래, 이한성, 김도읍, 김진태 의원 ② 김무성 · 유승민 의원에게 법안 통과 협조 부탁 요청 - 공청회 즈음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언급 유도 - 유승민 질문 → 정갑윤 · 이병석 답변이 이상적
	접촉 루트	① 실장급 이상
	지역구 현안	
	대화 소재	① 대표발의 감사 → 통과 시 법원이 늘 감사할 것이 라는 점을 적절히 설명

정갑윤 (여당)	입장 ·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발의 · 찬성 ② 국회 부의장 · 중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법원 추진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음 ② 형사 항소심의 온정주의를 상소 원인으로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상소 방지 위한 하급심 강화 방안 설명 - 형사재판장 연수에서 CJ도 같은 취지 언급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지 의사 확인 → 신속한 재판 강조 필요 ② 국회 아닌 곳에서도 상고법원 이슈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즈음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언급 유도 - 이한성, 노철래, 김진태, 김도읍 설득 부탁 ③ 공청회 발언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고심 개선 필요성 ㉡ 지부 설치 외 지역 접근성 제고 방안을 직접 언급 유도 → 김도읍 견제 · 설득 목적
	접촉 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장급 이상
	지역구 현안	
	대화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허 1심 관할 집중 법안 발의(4월 통과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 안으로 민소법개정안 대표발의 ② 3. 11. 울산과학기술대의 과학기술원 전환 (김무성 방문)

이병석 (여당)	입장 ·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발의 ② 전직 국회 부의장 · 4선 · 중진 ③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 의원 영향력 大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親 법원 → 여당 설득 거점 의원 ② 법원에 추가 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이해 위한 진지한 설득 · 홍보 필요 ③ 상고허가제 언급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지 의사 확인 → 신속한 재판 강조 필요 ② 국회 아닌 곳에서도 상고법원 이슈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즈음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언급 유도 - 이한성 · 김도읍 설득 부탁 ③ 공청회 발언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고허가제가 원칙적 방향 → 미국 자료 제공 ㉡ 미국도 상고법원 도입 시도하다가 상고허가제 강화 방향으로 결론 내림
	접촉 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장급 이상
	지역구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포항 KTX 직통 개통 축하(4. 1.자) ② 환동해권 중심도시 추진
	대화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후화된 대구지법 청사 이전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국감 발언 → 부지 관련 대구 협조 필요 ②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취임 축하(3. 17.자)

박지원 (야당)	입장 · 중요성	① 발의
	특징	① 찬성 - 미국 대법원 시스템 언급 ② 법원에 추가 주문 ㉠ 대법원 다양화 및 하급심 강화 동시 추진 필요 ㉡ 고위 법관 자리 늘리기 오해 불식 필요 ③ 야당 의원 설득 부탁 - but 전해철 의원과 소원함 - 목포 출마 준비 중인 서기호 의원에 대한 영향력 확인(목포 출마 문제로 소원 가능성 유) ④ 현재 형사사건 2건 계류 중 (만만회, 저축은행) - 운신의 폭 넓지 않을 수 있음 - 오해 소지 없도록 유의
	대응전략	① 지지 의사 확인 ② 공청회 발언 전략 ㉠ 상고법원 도입 효과 - 대법원 전원합의체 활성화 - 신속 · 충실 · 전문화 제고 - 심불 폐지 ㉡ 다양화 필요성 및 가능성
	접촉 루트	① 실장급 이상
	지역구 현안	① 3. 20. 산학융합지구 발전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대화 소재	

임내현 (야당)	입장 · 중요성	① 발의 · 1소위
	특징	① 찬성 ㉠ 상고허가제 보완 방안 ㉡ 대법관의 중요사건 검토 여유 보장 ② 법원에 추가 주문 : 임명절차에 대한 대안
	대응전략	① 4심제 등 상고법원 반론의 여러 쟁점에 대한 이론적 설명 필요 ② 공청회 발언 전략 ㉠ 상고법원 법관 추천위원회 등 임명절차 개선방안 질의 유도 ㉡ 추천위원회 구성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질의 유도
	접촉 루트	① 실장급 이상
	지역구 현안	① 광주 용두동 - 담양 간 도로 확장 국비 지원 확정
	대화 소재	① 세월호 이○○ 선장에 대한 무죄 부분 비판 - 유죄 선고된 기관장 2명과 동일한 지위라는 주장 ② 아베 총리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관련 미 하원 로이스 외교위원장 면담(日 과거사 사과, 반성 촉구) - 3/16~3/21 방미 결과

대법원의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 도입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의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관이 혐의자를 체포할 때 하는 이 말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미란다 원칙’에서 비롯되었다. ‘미란다 원칙’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으로 형사절차에서 인권 보장의 기초가 되고 있다.

소송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도 연방대법원은 연간 접수되는 약 8,000건 중 사회적으로 중요한 80여 건만을 선별하여 재판하면서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다.

우리는 어떤가. 대법원은 2014년 기준 연간 약 38,000건, 대법관 1인당 3,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숨 막힐 듯 쏟아지는 서류 더미 속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고, 대법관 13명 전원이 치열한 토론과 숙의(熟議)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지향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전원합의체는 매우 드물게 된다. 결국 ‘미란다 판결’과 같은 빛나는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상고사건을 분류한 후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 상고법원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한창이다. 미국도 1970년대 연방대법원이 재판할 사건이 급증하자, 워렌 버거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었다. 연방대법원이 재판해야 할 사건 중 일부를 상고법원이 담당하고, 연방대법원은 더 중요한 사건만 재판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논의 끝에 상고법원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연방대법원이 중요한 사건만 선별하여 상고심 재판을 할 수 있는 상고허가제를 채택하였다. 연방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재판하는 것보다는 국가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한정하여 깊이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독일, 영국, 일본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대법원이 최고법원답게 법령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여 원칙을 세우고, 사회와 일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 정서상 상고심을 무턱대고 제한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면도 있다. 그래서 대법원은 통일된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건이나 사회 전체와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담당하고, 상고법원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국회가 논의 중인 상고법원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대법원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고, 개별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소홀하지 않기 위한 고육책인 것이다.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개인 간 분쟁에 그치는 사건은 경륜 있는 법관들로 구성된 상고법원에서 신속하게 심리되고, 전문적인 사건은 상고법원의 전문재판부를 통해 더욱 충실하게 처리될 것이다. 대법원은 매주 변론을 열어 대법관 전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사회적·법률적 견해를 제시하면서 논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며 사회 통합을 위한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대법원다운 대법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출발점이 상고법원 도입이다.



상고법원 관련 언론 지상 좌담회 시행 방안

2018. 7. 31.

기획조정실

1. 필요성

- 상고법원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법안 홍보 필요
 - ①국민적 관심도 및 이해도 낮은 수준, ②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이해 부족, 막연한 거부감
- 언론 홍보 효과 극대화 필요
 - 최대 보수 메이저 언론 활용 ⇨ 조선일보
 - 설득력 및 독자 집중도 제고 필요 ⇨ 1인의 기고문이나 인터뷰 보다는 중량급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지상 좌담회 검토
 - 보수 세력의 인지도 상승, BH·법무부의 관심 유인 등 상당한 긍정적 효과 기대 ⇨ 상고법원 입법의 공감대 확산시키는 결정적 분수령 될 수 있음

2. 개요 : 상고법원에 관한 지상 좌담회

- 참석자
 - [입법부] 홍일표 의원 or 중량급 국회의원
 - [법조및학계(사회원로)] 이○○(전 변협회장), 오○○(전 서울대 총장)
- 사회 : 조선일보 법조 담당 논설위원 또는 편집부국장
- 논의 세부 주제
 -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 상고사건 급증, 대법원의 심판기능 장애 우려



- 선진 각국의 입법례

- 상고허가제 개요, 도입 배경, 제도 운영 현황 등

- 상고법원 도입의 긍정적 효과

- 대법원의 정책법원化 + 상고법원의 개별적 권리구제 기능 강화 ⇨ 신속·적정한 상고사건 처리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 상고법원 도입에 따른 헌법상 문제점 여부 및 그에 대한 반론 등

- 대법원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 헌법상 권리 X, 심급제도는 법률 위임 사항
- 사실상 4심제? ⇨ 극히 예외적으로 특별상고 허용(1년에 20건 미만 예상), 재심과 유사하게 운영될 것
- 사실심 충실화 선행되어야? ⇨ 진지한 제도개선 노력 병행 중, 곧 가시적 성과 있을 것, 사실심 개선과 상고심 개선에 선후가 있을 수 없음
- 상고법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문제 ⇨ 국회 청문회 실시 방안, 상고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방안 등 대안 검토 중

▣ 시기 ⇨ **법안통과를 위한 추동력 제고에 가장 유리한 시점**

- [1안] 4. 20. 법사위 공청회 개최 이전

- [2안] 4. 20. 법사위 공청회 직후 ~ 5월 초 사이

- [3안] 5월 중순 ~ 6월 임시국회 이전 사이

- [검토] ⇨ 제3안

- 1안은 사전 분위기 조성에는 유리하나, 일정이 너무 촉박함
- 2안은 1소위 심사 대비 우호적 환경 구축에 도움될 수 있으나, 국회 일정 상 홍일표 의원 등 섭외가 쉽지 않을 것
- 4월 임시국회 1소위 심사 결과까지 반영하여 충실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본격 통과 추진해야 할 시기에 임박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할 수 있도록, 5월 말 또는 6월 초 실시 추진



3. 향후 추진 계획 ⇨ TFT 구성하여 면밀한 사전 준비

■ TFT 구성 배경 및 목표

- 원활하고 성공적인 좌담회를 위해 논의 주제별 예상 질의 및 답변 자료 준비
- 풍부한 예상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 각 실·국의 심의관들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협업 체계 구축

■ TFT 주요 과제

- ①좌담회 질의 사항 발굴
 - 좌담회 주도를 위해 상고법원 관련 주요 쟁점 중심의 질의 사항 발굴하여 조선일보에 사전 제시
 -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에 게재된 상고법원 관련 주요 칼럼 및 기사 분석
⇨ 기사 논조 등을 통해 예상되는 질의 추출
 - 조선일보측으로부터 희망 질의 사항 수집
- ②예상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 작성
 - TFT 팀원별로 행정처 자체 예상 질의 사항 및 조선일보 희망 질의 사항 분류
 - TFT 팀원이 소속 실·국의 심의관들 협조 아래 답변 자료 작성

■ 기타 좌담회 준비 사항 점검, 대비

- 참석자별로 강조하여 발언할 부분 분담
 - 홍일표 의원 ⇨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상고법원 도입의 장점
 - 이○○ 전 변협회장 ⇨ 상고법원 도입에 따른 헌법상 문제점 여부 및 그에 대한 반론
 - 오○○ 전 총장 ⇨ 선진 각국의 입법례
-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준비 ⇨ 상고법원의 기대



효과 부각

- 4월말 상고법원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용** 관련 정책연구용역결과 확보 시, **전면에 내세워 대대적 홍보**
- 조선일보측과 최종 질의 사항 및 분량, 할당 지면 등 조율
- 기타 좌담회 준비 사항 논의, 점검

■ TFT 구성(안)

- [팀장] 이○○ 사법등기국장
- [팀원] 박○○ 기획조정심의관, 김○○ 홍보심의관, 김○○ 사법정책심의관(간사), 최○○ 사법정책심의관, 이○○ 정보화심의관, 주○○ 조사심의관

■ TFT 운영방식

- 팀원별 예상 질의 사항 및 답변 자료 작성, 보고
 - 팀원별로 예상 질의 사항 취합하고 그에 대한 답변 자료 초안 작성
 - TFT 회의에서 질의 사항 및 답변 자료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및 논의
- 1주 예정으로 TFT 진행
 - 좌담회 개최 전 1주일 동안 TFT 활동
 - 제1, 2차 TFT 회의
 -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 상고법원 관련 칼럼 및 기사 분석을 통한 예상 질의 사항 보고
 - 팀원별로 발굴한 예상 질의 사항 보고
 - 제3차 TFT 회의
 - 예상 질의 사항에 대하여 작성된 답변 자료 보고
 - 예상 질의 사항 및 답변 내용에 관한 보완 사항 논의
 - 최종 점검 및 활동 결과 보고 [끝].

상고법원 주요 쟁점

1. 왜 상고제도를 개선해야 하는가?

- **상고사건 수 : 10년 만에 2배 증가**
 - 접수건수 : 2003년 18,888건 vs 2013년 36,110건
 - **대법관 1인당 사건 수 : 2003년 약 1,500건 vs 2013년 약 3,000건**
 - 대법원 내부 운영의 개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임
- **2014년 37,652건 접수 : 전년 대비 4.1% 증가**
 - 2015년 2월 기준 전년 대비 7.6% 증가 ➔ 2015년 약 40,000건 돌파 예상
 - ➔ ①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 약화 우려**
- **전원합의체 : 연간 약 20건(약 0.05%) (※ 2014년 총 14건)**
 - ➔ ② **법령해석 통일 기능 장애 우려**
- **주요 선진국의 연간 상고심 판결 건수**
 - 미국·영국 : 약 70~80건 내외
 - 독일·일본 : 약 4,000건 내외
- **상고심 재판의 의미**
 -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정의를 세우는 데는 두 번의 재판이면 충분하다. 세 번째 재판(상고심)은 그 사건에서 누가 이기는가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문제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미국 윌리엄 태프트 대법원장)

2. 선진 각국의 입법례 ⇨ 상고허가제 원칙 ⇨ 상고법원안은 차선책

• 미국

- 1789년 : 상고사건 선별 권한 없음 → 남북전쟁 후 사건 급증
 - 1891년 : 상고허가제 도입 (권리상고사건 제외)
 - 1925년 : 상고허가제 확대 (거의 모든 상고 사건 - 태프트 대법원장)
 - 1972년 : 상고법원 도입 추진 (워렌 버거 대법원장)
 - 1988년 : 상고법원 대신 상고허가제 전면 실시 법제화 (상고사건선별법)
- ※ 연방대법관은 총 9명이고, 역사적으로 10명을 넘은 적이 없음

• 영국

- 역사적으로 계속 상고허가제 실시
- ※ 대법관은 총 12명

• 독일

- 민사 : 상고허가제 전면 실시 (2002년)
- 형사 : 상고심 이원화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상고심을 나누어 담당)

• 일본

- 전후 미국의 영향으로 상고허가제(상고수리제) 도입
 - 민사 : 상고허가제 + 상고심 이원화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상고심을 나누어 담당)
 - 형사 : 상고허가제
 - 1950년대 : 최고재판소에서 상고법원 설치 제안 → 법률안 제출
→ 중의원 해산으로 법률안 폐기
 - 이후 상고사건 증가로 상고허가제 확대 시행
- ※ 최고재판소 판사 14명

3. 상고심 개선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나? (다양한 시도 ⇨ 모두 실패)

- 1959년 :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 목표 : 신속한 사건 처리, 대법원 사건 부담 감소,
- 내용 : 대법원에 대법관과 일반 법관을 모두 두고 상고심을 담당하게 함
- **한계** : ① 헌법상 지위가 다른 대법관과 일반 법관이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모순이 발생함
② 많은 재판부가 생기므로, 판결 사이에 모순 저축 가능성 높아짐

- 1961년 : **고법 상고부 설치** + **대법원 소부 폐지** + **전원합의체**

- 목표 : 신속한 사건 처리, 대법원 사건 부담 감소, 전원합의체 활성화
- 내용 : 상고심을 대법원과 고등법원(1심 단독사건의 상고심)이 나누어 담당
- **한계** : 고등법원별로 결론이 통일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

- 1963년 : **고법 상고부 폐지** + **대법원 소부 설치** + **전원합의체**
+ **대법관 증원(4명)**

- 목표 :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령해석 기능 강화
- 내용 : 상고심을 대법원에서 모두 전담
- **한계** : 대법원 사건 증가로 인해 대법관 증원 효과가 미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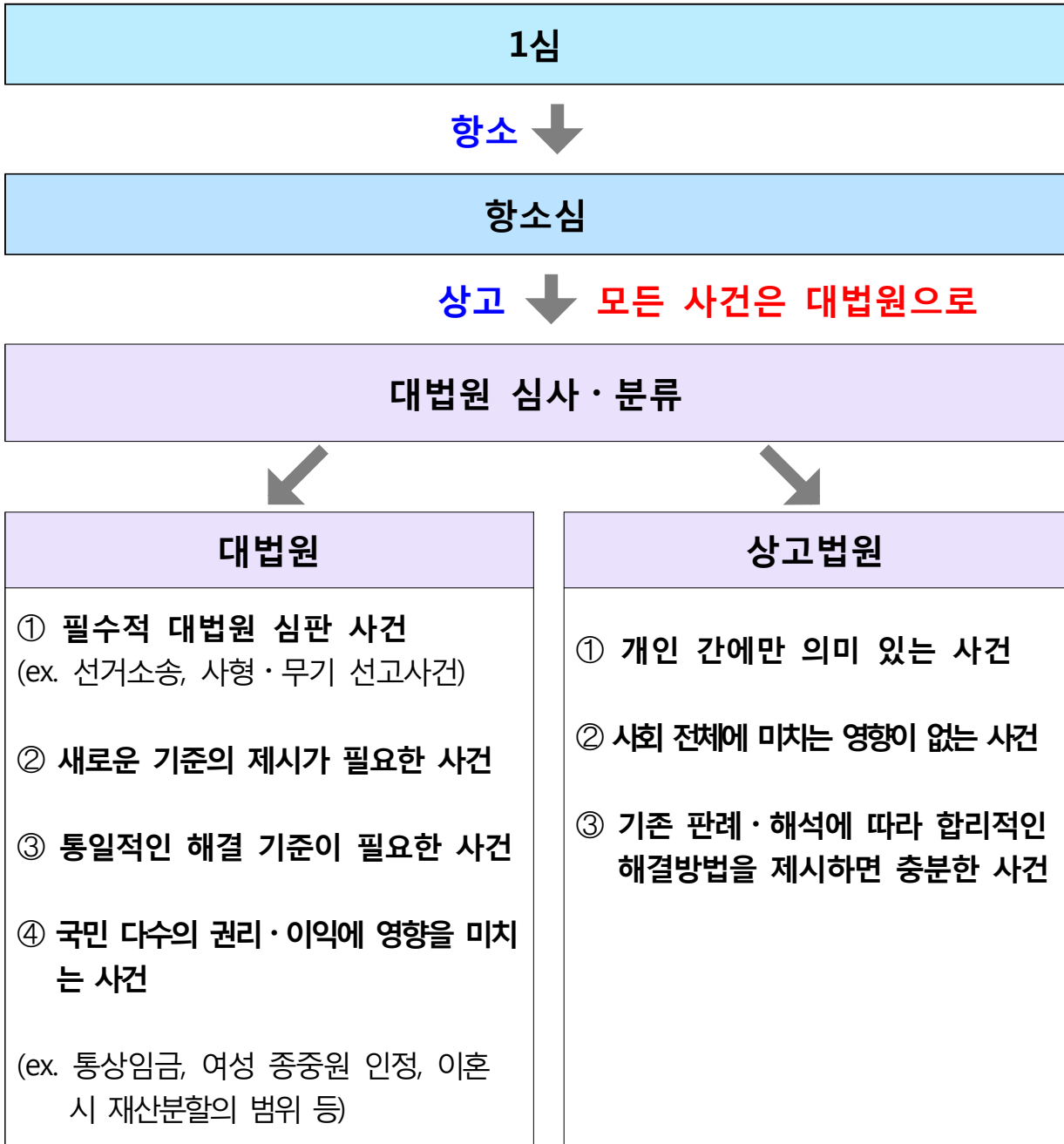
- 1969년 : **대법관 증원(3명)**

- 1981년 : **대법관 감원(3명)** + **상고허가제 도입**

- **한계** : 상고심 재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법 감정과 상충

- 1990년 : **상고허가제 폐지**

4. 상고법원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5.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촉진

- Q :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A :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상고심제도 개선과 동시에 달성해야 할 과제임
- 대법원은 지금처럼 많은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일반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만 전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양성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 다양한 경력·경험을 지닌 대법관이 필요하게 됨

• 대법원의 변화

① 전원합의체 활성화

- 공개변론, 재판방송 등을 통해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가치 기준을 제시

② 충실화 (← 깊이 있는 검토와 토론 거침)

③ 신속화 (←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집중 처리)

• 상고법원의 변화

① 충실화 (← 변론을 열어 심리하는 사건 증가, 전문재판부에서 심리)

② 신속화 (← 대법원의 사건 분류 후 경륜 있는 법관이 처리)

③ 전문화 (← 가사, 민사, 특허 등 전문재판부 설치)

④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 (→ 판결 이유 설명 기능 강화)

6. 상고법원이 국민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

- 헌법상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
 - ➔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
 - 모든 사건에 대해 똑같이 세 차례의 법률적 심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은 아님 (헌재 90헌바25 결정)
 -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인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음 (헌재 2006헌마551 등)
- 헌법상 제107조 제2항 및 군사재판을 제외하고는 대법원을 최종심이나 상고심으로 규정한 것 없음
 - ➔ **대법원 심판사건의 범위 및 심급제도는 국회의 입법재량 사항**

7. 상고법원 법관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지 않나?

- 상고심 법관이 모두 '대법관'이거나 '국회 동의 및 대통령 임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님
 - **헌법 §102 ②** : 대법원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음
 - 상고심을 '일반 법관(대법원장이 임명)'이 담당할 수 있음을 예정
 - 상고법원 법관은 '일반 법관'이므로 대법원장이 임명권한을 가짐
- **국회 입법재량**에 따라 **임명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방안** 마련 가능
 - 가칭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 방안
 - 추천위원회에 행정부·입법부가 추천하는 구성원을 포함시키는 방안
 - 임명과정에서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8.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4심제' 가 되는 것 아닌가?

• 상고법원의 지위

-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상고심을 담당하는 법원 → **3심제 유지**
- 상고법원 판결 선고 시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확정 판결의 기판력 등이 발생 → **더 이상 다룰 수 없음**
- '특별상고'를 제기하더라도, 확정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 특별상고 제도

- 사유 : 상고법원이 심판한 사건에 '헌법위반, 판례위반'이 있는 경우
- 방지책
 - ① **대법원이 상고사건을 모두 심사하여 분류** → '헌법상 쟁점' 관련 사건을 대법원이 전담함 → 상고법원에서 '헌법위반'을 할 가능성을 **방지함**
 - ② 상고법원은 만장일치인 경우에만 선고 가능 → 이견이 있거나 합의 결과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론에 이른 경우에는 대법원으로 '**이송**'함 → 상고법원에서 '**판례위반**'을 할 가능성을 **차단함**
- 특별상고는 '**재심**'과 유사한 제도 → '재심'에 대해 '4심'이라고 하지 않음
- 日本도 고등법원에서 상고심을 하는 사건에 대해 '**특별상고**' 제도를 두고 있으나, '**4심**'이라는 비판은 없음
- 사실심에서 상당한 경륜을 갖춘 이들로 구성된 상고법원의 판단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극히 희박함

9. 간단하게 대법관 수를 늘여서 해결할 수는 없나?

- 독일, 프랑스 상고심에 있는 100명 이상 법관이 모두 '대법관'은 아님
 - 독일(연방일반법원) : 법원장·부장판사·배석판사로 구분, 직급도 R10~R6까지 다름
 - 프랑스(파기원) : 부장판사·판사로 구분
-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할 가능성 있음
 - 헌법상 국회 동의 대상자는 **대법관 외 헌재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뿐
 - 대법관도 소수로 예정 → 대법관의 수십 명 증원은 입법·행정·사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할 가능성 있음 → 헌법이 예정한 상황 아님
- 인사청문회 개최 부담
 - **36명으로 증원 시(대한변협 안) 평균 2개월에 1회** 꼴로 인사청문회 필요
→ 인사청문회 주기 : 대법관 임기 72개월(6년) ÷ 36명 = 2개월/1명
 - 대법관 추천·검증절차까지 고려하면 상시 인사청문회 개최 → 국회 부담
- 전원합의체는 사실상 불가능해짐
 - 36명 또는 48명 증원 의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요성과 역할을 간과
 - 소부 중심의 대법원 운영 → 판결 사이의 모순 저축 발생 → 국민·하급심 혼란
 - 독일처럼 **대법관들의 대표자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헌법에 반함
(∵ 헌법상 대법관의 역할, 권한의 차등을 둔 규정이 없음)
- 대법관 소수 증원의 효과 미미
 - 대법관 4명 증원 → 1인당 2,250건 담당 → 여전히 많은 편
 - 대법관 1인당 1,500건을 담당하던 2005년에도 상고심 개선을 위해 '고법 상고부' 도입 논의를 하였음
- 사건 수 증가에 따른 대법관의 계속 증원은 불가능

10. 변호사들과 일반 국민도 반대하는 제도 아닌가?

- 현재 국회 제출된 상고법원 법안에는 '심리불속행 폐지'가 명시
→ 변호사 다수는 상고법원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 대한변협 설문조사(2014. 12.)
→ 심불 폐지 시 상고법원 찬성 59%
→ 현재 집행부의 입장은 회원 다수의 입장과 차이 있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2014. 8. ~ 2014. 9.)
→ 심불 폐지 시 상고법원 찬성 57%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찬성' 입장 표명
- 중앙일보 디지털 썰전 설문조사(2015. 2.)
→ 상고법원 찬성 60% : 반대 40%
→ 법률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상고법원에 대한 의견이 유사함

※ 상고제도 개선 추진 경과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상고법원 도입 건의(2014. 6.)
-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2014. 9.)
- 대한변협 '상고심 개선에 관한 토론회' 개최(2014. 10.)
- 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논의와 쟁점' 개최(2014. 11.)
- 민사소송법학회 동계학술대회 '상고법원 도입에 관하여'(2014. 12.)
- 홍일표 의원 등 168명 국회의원 개정 법률안 발의(2014. 12.)
- 법사위원장 · 입법조사처 공동 '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개최(2015. 3.)
- 국회 법사위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 개최 예정(2015. 4. 20.)

공청회 후 의원별 대응전략

2015. 4. 21.

사법정책실

I. 기본방향

- 찬성 의원 : 유보 . 반대의견에 동요되지 않게 단속
- 유보 . 반대 의원 : 단기 과제는 전체회의 前 해명 → 소위 회부 後 추가 과제 설명
 - 단기 접촉 필요 : 이상민, 서영교, 서기호, 김도읍
- 불참 . 미발언 의원 : 입장 확인 → 주요 의문점 해명

II. 의원별 대응전략

가. 찬성

- 이병석
 - 입법 · 행정 · 사법부 공동 참여하는 추천절차 마련
 - 특별상고 인용 시 인지 환급 →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결과적으로 환급됨
- 이춘석
 - 사실심 강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 박지원
 - 상고법원을 법조일원화로 구성
- 홍일표

나. 약한 찬성

- 임내현

-
-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에 두는 방안
 - 필수적 대법원 심판사건 확대
 - 대법관 다양화 필요, 상고법원 판사를 법관 위주로 인선할 것 우려
 - 대법원장 권한 강화 우려 해소방안

■ 우윤근 → **입장 확인 필요**

다. 유보

■ 서영교

- 단기 과제
 - 법원 내부·외부 의견 수렴 설명(A) → 작성 중
 - 대법관 일상 등 공감 노력 필요 → 언론보도 자료(김○○ 대법관님 기사, 박○○ 대법관님 방송 등) 설명 → 지속 추진 예정 설명
- 추가 과제
 - 임명절차의 차이로 상고법원 법관은 대법원과 사이에 수직적 관계가 더 강화되어 소신이 약해질 우려
 -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상고법원 도입의 관계

■ 이상민

- 단기 과제
 - 법원 내부 의견 수렴 설명(A) → 작성 중
 - 23일 전체회의 안건 상정 → 소위 회부 필요
- 추가 과제
 - 현재 나온 방안 외 사실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라. 약한 반대

■ 이한성

-
- 형사 상고사건 원인 분석 ➡ 약식 약 6,000건 ➡ 불이익변경금지로 설명
 - 재임용강화, 양형기준 준수 등 설명

마. 반대

■ 김도읍

● 단기 과제

- 1심 형사단독 · 합의 항소율 비교(B) ➡ 작성 중
- 상고법원 판사로 법관 위주 배치 지양 ➡ 법조일원화로 해결 가능
- 하급심 부실화 우려 ➡ ① 법조일원화로 임명
② 재판연구관 전체 인원 동결

● 추가 과제

- 상고 파다 원인 분석 (일본과 상고율 차이 없으나, 항소율 차이 많음)

■ 김진태

● 추가 과제

- 사건 수 정점 도달, 인구 대비 사건 수도 감소 경향

■ 서기호

● 단기 과제

- 현재 90헌바1 결정 설명(C) ➡ 작성 중
- 고법 상고부 제도와 비교 설명(D) ➡ 작성 중

● 추가 과제

- 통계의 근본 원인 분석
- 사실심 충실화 노력

바. 불참 · 미발언 의원

- 정갑윤 · 전해철(불참) / 노철래 · 김재경(참석 후 미발언)

공성회 후 쟁점별 대응전략

2015. 4. 21.

사법정책실

I. 단기 쟁점

- 법원 내 . 외부 의견 수렴(A) → 이상민 . 서영교 . 서기호 . 홍일표
- 1심 형사 단독 . 합의 항소율 비교(B) → 김도읍
- 현재 90헌바1 결정(C) → 서기호
- 고법 상고부 제도와 비교(D) → 서기호
- 대법관 일상 등 공감 노력 필요 → 서영교 → 언론보도 자료
- 상고법원에 법관 위주 배치 지양 → 김도읍 → 법조일원화, 연구관 수 동결

II. 추가 쟁점

- 특별상고 인용 시 인지 환급 → 이병석
- 임명절차 → 임내현 . 서영교 . 이병석
- 필수적 대법원 심판사건 확대 → 임내현
- 대법관 다양화 → 서영교 . 이춘석 . 임내현
- 상고법관 다양화 → 박지원 . 임내현
- 사실심 강화 → 이상민 . 서기호 . 이춘석
- 통계 분석 → 김진태 . 김도읍 . 이한성 . 서기호
 - 사건 수 정점, 인구 대비 사건 수 감소 : 김진태
 - 상고 과다(일본과 항소율 차이) : 김도읍
 - 형사 상고 과다(약식) : 이한성
 - 통계 근본 원인 분석 : 서기호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홍보 전략 [플랜 B]

2015. 5.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 입법 추진 로드맵의 수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

- 당초 예상보다 국회 법률안 심사 더디게 진행 ⇨ 4월 임시국회까지 1소위 회부에만 성공, 본격심사 개시 실패
- 법사위 1소위 의원들의 반대·견제 성향에 비추어, 향후 1소위에서 2~3차례의 계속심사 예상
 - 6월 임시국회에서 1소위 2차례 개의된다고 할 때, 1소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연이어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음
- 하반기 정기국회에서의 입법성사 가능성 열어 두어야 함
 -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예산심사, 내년 총선 대비로 분주할 것
 - 그러나 상반기 국회의 법안 심사 실적이 저조하므로, 국정감사 종료된 10월 말경부터 법안 심사에 돌입할 여지 유력

☑ 중전의 국회 정기회에서의 법사위 고유법안 심사 일정

- ▶ [2011년(19대 총선 직전)] 10. 24. 제1소위 개의, 12월 말 임시회 개의
- ▶ [2012년] 11. 15. 제1소위 개의, 12월 말 임시회 개의
- ▶ [2013년] 정기회에서 사개특위 결과보고 등으로 법안심사 미실시, 12월 중순 임시회 개의하여 법안 심사
- ▶ [2014년] 11. 6. 제1소위 개의, 12월 말 임시회 개의

▣ 하반기 국회통과에 대비한 홍보전략 [플랜B]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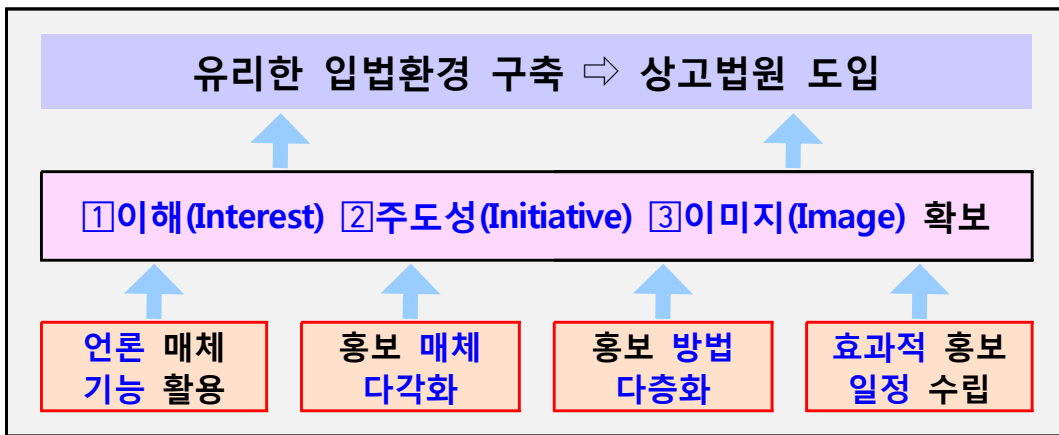
- 5, 6월 홍보에 전력 집중하는 플랜A에 의할 경우, 7월 이후 사회적 관심과 지지여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음
 - 예컨대, 2014. 12. 법안 발의 이후, 언론의 관심대상에서 멀어져 입법 추진



동력 하락한 경험 有

- 10월경까지 상고법원에 대한 여론의 높은 관심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 수립
 - 홍보 목표 및 타깃, 홍보 방법, 일정 등 점검 ⇨ 최적의 홍보 전략 설계

2. 홍보전략 [플랜 B] 기본 계획



가. 목표 ⇨ [3 I I] 1이해(Interest), 2주도성(Initiative), 3이미지(Image) 확보

■ 상고법원 도입의 정당성을 창출하는 강력한 PR(Public Relations) 커뮤니케이션 구축

- 최상의 홍보기관인 언론을 통한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적극적 목표] 입법환경에 우호적 여론 조성

- 여론 주도층과의 호혜적 관계 형성

- 상고심 개선의 이념, 목표, 정책 등에 대한 이해 제고
- 사법부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일관된 제도개선 추진 이미지 형성
- 상고법원 도입의 사회적 이슈화에 대한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 피력

- 일선 법원을 포함한 사법부 전체의 홍보역량 결집 및 홍보 마인드 구축



- 확고한 추진 의사 대내외 표방 ⇨ 사법부 내부의 총화 형성
- 일선 법원의 판 목소리 지적하는 일각의 문제제기 일축
- 공공 PR의 당위성 확보
- 일반 대중과의 정보 소통 ⇨ 상고심 제도개선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한 정당성 확보

■ [소극적 목표]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반대 기류 약화**

- 상고법원 추진의 장애 및 위험요인 예방·완화·해소
- [對보수층] 법무부 등 막후 견제 세력의 방해 책동에 대한 방어
 - 일부 부정적 보도가 보수계층의 공식 입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대응
- [對진보층] 민변 등 격렬한 반대 세력의 거친 목소리 잠재우기
 - 진보 진영의 단일한 공식 입장이 상고법원안 반대가 아님을 확인시킴

나. 홍보 타겟(Target) ⇨ ① [직접적] **일반 국민**, ② [간접적] **국회의원**

■ 직접적 타겟

- 일반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대중의 관심 유인
 - ①전통 매체에 의한 보도, ②인터넷 등 활용한 대국민 직접 소통 병행
- 전문가 등 여론 주도층 설득 ⇨ 우군 확보
 - 견제·반대 세력과의 갈등 국면에서 필요한 지지자 획득 ⇨ 상고법원 지원의 寶庫(Reservoir of support) 구축

■ 간접적 타겟

- 일반 국민, 여론 주도층의 찬동 분위기가 국회의원들에게 유입되도록 함
 -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향배와 유권자인 국민의 반응에 매우 민감
- 여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응 속도와 방향에 따라 실효적인 대국회 설득전략 구축 등 선순환 효과 도모



다. 홍보 방법

1) 언론매체의 **안건설정 · 안건정의 · 여론정의** 기능 활용

■ ① 안건설정

- 무엇이 매체 보도 사안이 될 것인가? ⇨ 상고법원을 주도적으로 꾸준히 언론 지상에 노출시킴

■ ② 안건정의

- 사안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 상고법원 도입을 전제로 장점, 기대효과 등 부각

■ ③ 여론정의

- 언론매체가 어떻게 뉴스를 선별하고 보도하는가? ⇨ 상고법원을 둘러싼 위헌론, 조직 확대론, 대법관 위상 유지 등 선정성 공방 억지

☑ [반면교사] 클린턴 행정부의 의료제도개혁 실패 사례

- ▶ 대통령이라는 우월적 지위, 다채로운 홍보 무기에도 불구하고, PR 커뮤니케이션 실패로 제도개혁 좌절
- ▶ [패인①-안건설정의 주도권 상실] 의료산업계의 클린턴 개혁안에 대한 허점 보도 선점 ⇨ 클린턴 행정부는 그에 대한 반박에 급급, 대안 제시 타이밍 상실
- ▶ [패인②-안건정의의 주도권 상실]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 전달 부재, 수용자 집단에 따라 통일되지 않은 내용 유포 ⇨ 의료개혁의 청사진 제시 실패
- ▶ [패인③-언론매체 생리 이해 부족] 의료개혁안보다 그 배경의 정치적 싸움, 대통령 입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흥미위주의 피상적 보도 몰두 ⇨ 언론관계 실패로 제도개혁 추진력 상실

2) 홍보 매체의 **다각화** ⇨ 새로운 **홍보 방안 발굴**

■ 6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불발 대비

- 일단 그 직후에는 '상고법원 물 건너가나'라는 식의 냉소적 언론보도 이어질 수 있음 ⇨ 보다 강도 높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 준비하여 맞대응



▣ 신문 등 전통적 지면 매체 활용 지속

- 텍스트 메시지 중심의 논증적 성격의 주장과 사실 전달에 적합
- 전문가 등 여론 주도층의 인식 형성에 영향력 발휘
- 보수와 진보성향 신문사 고르게 공략
- 일간지/웹물전문지 성격에 맞게 보도 방향 및 논증 수위 등 결정

▣ TV, 라디오 등 방송 매체 활용 시도

- 방송 매체는 시각적·청각적 채널에 의존하여, 메시지 내용보다 메시지 정보원이 보다 부각됨 ⇨ 신문 등 지면 매체에 대한 보충적 홍보 매체로 활용
- 단기간 반복 홍보 시, 폭발력 증폭될 수 있음 ⇨ 입법 통과 임박한 시점에 마지막 여론몰이 수단으로 검토
- 기사의 절대가치보다 이미지 선호에 따라 뉴스 채택 여부 결정
 - 새로운 뉴스보다 중요한 뉴스에 관심 ⇨ 상반기 상고법원을 둘러싼 여론 분위기에 따라, 9월 이후 방송을 통한 이슈 점화 도모

▣ 네이버 브랜드,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매체 홍보 시도

- 인터넷, 모바일, SNS 등 쌍방향 언론 매체를 선호하는 20~30대 여론층 공략 필요
 -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대중매체, 조직매체, 대인매체 경계 불명
 - 매스미디어의 영향력 쇠퇴 ⇨ 정보 범람에 따른 언론 이용자들의 뉴스에 대한 집중력과 신뢰도 저하
- 수용자 중심 정보유통환경에 적합한 홍보 방안 마련

3) 홍보 방법의 다층화

▣ 제3자 뉴스원 활용



- 상고법원 이슈를 전문가나 유명인을 통해 부각

- 언론사 내부 칼럼, 전문가 기고, 인터뷰 등

- 리서치 활용

- 설문조사나 여론 조사결과를 상고법원 의제로 연결

- 변호사 등 전문가 상대 상고법원 도입 관련 설문조사 후 결과 공표

- 공인된 연구결과 활용 ⇨ 객관성 · 신빙성 · 전문성 제고

- ‘상고법원 설치에 따른 경제적 효용’, ‘대법원의 역할 및 위헌론’ 등 정책연구용역결과 보도

- 책임연구교수와의 사전 미팅 및 박스 인터뷰 실시

- 시각적 · 입체적 이미지 광고 활용

- 동영상 광고, 포스터, 웹툰 등 제작 ⇨ TV, 지하철 행선기, 인터넷 포털 등에 업로드

- 지난 4월 게재된 1차 동영상에 이은 참신한 후속 홍보물 제작 · 업로드

- 1차 동영상이 제도 안내에 치중하였다면, 2차 동영상은 보다 친숙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으로 구성

- 지속적인 신문 칼럼 및 기고 게재에 따른 신선도 하락, 소재 생산의 한계 등 극복

- 퍼블리시티 스텐트(Publicity Stunt) 활용

- 이벤트나 캠페인 등으로 호기심 자극하는 방안

- 상고법원 정책세미나 등 개최하여, 언론의 관심 유인

라. 홍보 일정

- [플랜 A]의 홍보 방안 재배치 ⇨ **5월 전력집중 전략 수정**



- 5월 실시 추진해 오던 각종 **홍보 일정 재조정**
- 10월경까지 상고법원안에 대한 여론의 불씨가 소진되지 않도록 **장기적·산발적 홍보 방안 입안**

▣ **법안심사 일정에 조응한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

● [5월·6월]

- 6월 임시국회 1소위에서의 실질적 법안 심사에 대비한, **우호적 여론 형성**
- 상고법원 도입을 전제로, 미시적 쟁점에 관한 의견조율 및 자구수정 분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구체적 아이템 집중 제공**

● [7월·8월]

- 올해 **처리되어야 할 주요 법안**으로 꾸준히 언급되도록 함
- 6월 임시국회 1소위에서 **반대 의원들의 논리에 대한 반박성 기사** 등 게재

● [9월·10월]

- 정기국회에서의 **통과가 낙관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홍보 실시
- 다른 정치 현안 등으로 법안 심사가 늦어질 경우, 국회의 무관심을 질타하는 기고문 등 게재

▣ **홍보전략 [플랜 B] 로드맵 ⇨ 정책실과 협의**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①썰전 ②법률신문 -서울변회장 인터뷰 -대안 시리즈	①조선일보 -지상죄담회 ②매일경제 -경제적 효과 보도 ③정책세미나 보도	①법률신문 -목요일언 칼럼 ②동아일보 -기획기사 ③한겨레, 경향 -기고문	①한국일보 -기획기사 ②중앙일보 -일상유감 칼럼 ③2차 동영상 광고 론칭	①조선일보 -설문조사 -사내 칼럼 -기고문 ②중앙일보 -시시각각 칼럼	①TV, 라디오 방송 ②기고문 게재 ③前대법관 일상 소개



3. 향후 계획

▣ 홍보전략 [플랜 B]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상고법원 대응전략 TFT에서 세부 준비 사항 등 점검
- 기조실, 정책실, 공보관실 등 관련 부서간 의견교환 ⇨ 세부 전략 확정

▣ 홍보 콘텐츠 마련 ⇨ 정책실 중심으로 주요 콘텐츠 구상·준비

- 대법원·상고법원 역할 도해
- 각국 최고법원 판사 임명, 자격, 직위 등
- 고법 상고부 당시와 입장 비교 ⇨ 법무부, 경실련, 민변, 임○○ 교수 등
- 상고심 개혁의 변천사
- 구체적 사례별 각국의 소송비용 및 시간 비교 등

조선일보 홍보 전략 일정 및 콘텐츠 검토

2015. 5. 4.

사법정책실

1. 가능한 방안

■ 1안

- 방안 : 5/6~7(1차보도) + 좌담회 / 설문조사 / 사내칼럼
- 장점
 - 4월 국회 폐회 즈음 논의 필요성 강조
- 단점
 -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직권 상정 논의 중인 상황
 - 서울변회 내부 논의 촉박하여 성명발표 불가능 우려

■ 2안

- 방안 : 5/13~14(1차보도) + 좌담회 / 설문조사 / 사내칼럼
- 장점
 - 4월 국회 폐회 즈음 논의 필요성 강조
 - 서울변회 성명발표 가능 + 법률신문 인터뷰(5월 중순)와 연속성 확보
- 단점
 - 성완중 수사 일정 상 기사 보도가 불확실할 우려

■ 검토 ⇨ 2안 타당

- 대법관 임명동의안 진행 상황을 주되게 고려
- 현재 서울변화와의 논의 상황 고려(5/8 만찬예정 + 2안 시기로 추진 중)

2. 기사 콘텐츠

■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 결론 내려야**

- 대법원의 상황(심불제도에 대한 불만, 처리 지연) + 글로벌 스탠더드
- 국민의 불이익 방지 불가
- 제도 개선 공감대 형성
 - 법무부 : 4. 20.자 공청회 속기록
 - 형사정책연구원 승○○ 박사 인터뷰
 - 변호사 단체 설문조사 결과 인용
 - 서울변회 57% 심불폐지 전제 상고법원 찬성
 - 대한변협 59% 심불폐지 전제 상고법원 찬성
 - 대한변협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필요¹⁾
 - 학계 : 3. 2.자 정책세미나 및 4. 20.자 법사위 공청회 의견서²⁾
 - 시민단체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 교수(4. 20.자 공청회)

■ **상고심 개선의 역사 : 모두 실패 → 근본적인 대안 필요**

- 기존 제도 도입 역사 및 한계
- 2005-2006년 사개추위 및 고법상고부 법안 논의
- 2010년 사개특위 : 대법관 증원론 폐기

■ **상고법원안 내용 소개**

- 심불폐지
- 대법관에 의한 모든 사건 심사 ⇨ 중요 사건 대법원, 기존 법리 있는 사건은 상고법원
- 이송, 특별상고
- 효과 ⇨ 충실, 신속, 전문, 전합강화, 친절, 효율

1) 이○(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대한변협 이사), 이○○(화우), 신○○(이산), 유○○(화우), 박○○(전 서울 변회 기획이사), 황○○, 전○○(태평양), 이○○(바른) 등 추천 가능
2) 고려대 장○○, 중앙대 이○○, 고려대 유○○, 시립대 정○○, 고려대 김○○, 서울대 이○○, 연세대 신○○, 경북대 김○○, 고려대 하○○ 교수 등 추천 가능

■ 대법관증원

- 주장 내용
- 전원합의체 활성화 방향에 역행 :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상황
- 헌법 예정 사항 아님
- 인사청문회의 현실적 문제

■ 위헌론

- 학계 다수설, 현재 결정
- 외국 사례

■ 상고법원 판사 임명 ⇨ 대안 소개

- 대법관 임명과의 차이(대법관 임명 절차의 변천 과정)
- 각국의 최고법원 법관 임명 방식 개관
- 공청회에서 대안 논의 : 상고법관 추천위원회

■ 기타 대안

-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에 두는 방안
 - 과거 일본 논의 참조
- 대법원 심판 사건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자는 의견과 방법론 소개
 - 필수적 심판 사건 범위 확대 또는 사건 심사 기준 추가
- 대법관 수 감축
 - 일본 대심원(47명) ⇨ 최고재(15명)
 - 미국 9명 ⇨ one-bench 활성화
 - 독일 연방일반법원(BGH)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영국 12명, 미국 9명, 캐나다 9명, 호주 7명

뉴미디어를 활용한 상고법원 홍보 방안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5. 6.

상 고 법 원 뉴 미 디 어 홍 보 팀



< 요약 >

I. 검토 배경

- 상고법원 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한 **다각화·다층화된 홍보전략** 수립
- **[홍보 매체 다각화]** 신문, 방송 등 기존 전통적 매체 이외에 온라인 매체 등 뉴미디어 활용 방안 모색
- **[홍보 방법 다층화]** 동영상, 웹툰, 포스터 등을 이용한 이미지 홍보로 다양한 여론층 공략

II. 뉴미디어 홍보의 기본 방향

1. 홍보 목표

- [1차적 목표] 사법부에 대한 **호감도 상승**시키기
- [2차적 목표] 상고법원에 대한 **이해 제고, 장점 및 기대효과 부각**

2. 홍보 타겟

- [①주요 타겟] 인터넷, SNS 등 뉴미디어 활용에 익숙한 20대, 30대
- [②서브 타겟] 최근 들어 뉴미디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40대 이상 장년층

3. 뉴미디어 매체의 기본 특성을 고려한 홍보전략 수립

- **①간결하고 임팩트 강한 콘텐츠에 적합**
 - 대중의 이목을 한눈에 끌 수 있는 강렬한 홍보 컨셉 및 콘텐츠 발굴
- **②복잡한 내용은 짧게 나누어 반복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
 - 이해하기 쉬운 어휘 및 뉘앙스 사용
 - 일반 대중에게 거부감 없이 스며들 수 있는 홍보 방안 구상
- **③트렌드에 민감**
 - 뉴미디어 이용자들의 최근 관심사에 부응
 - 친숙하고 호감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 소재와 방법 활용

III. 뉴미디어 매체 특성별 홍보 방안



1. 페이스북(Facebook)

■ 매체 특성 및 현황

- 신문 등 매체 습득 정보보다 자신의 지인, 친목관계가 있는 사람이 올린 글이나 정보에 우호적으로 반응 ⇨ 영향력 있는 페이스북 운영자를 통해 상고법원안에 대한 지지 글 확산될 경우, 큰 파급력 예상
-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한 친구들간의 글 ‘공유하기’ ⇨ 수평적 여론 확산 기능
- 파워블로거와 같은 특정 운영자의 글 ‘공유하기’ ⇨ 팔로워들에 대한 수직적 여론 확산 기능

■ 홍보 방안

- ① 영향력 있는 법조계 내외의 FB 운영자들을 섭외하여 상고법원에 대한 지지 글 및 논거 확산
[법원 내부] 강○○ 부산지방법원장, 문○○ 부장판사
[법원 외부] 윤○, 강○○ 변호사, 배우 김○○, 윤○○, 송○○, 김○○, 윤○○ 등
- ② 법관 및 직원, 그 가족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지 글 공유하기 운동

2. 트위터(Twitter)

■ 매체 특성 및 현황

-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영향력 있는 트위터러의 글은 팔로워들을 통해 순식간에 전국적인 파급 효과
- 사회 민감 이슈 등에 관하여 주도적 트위터러의 의견 확산 통로가 되고 있음

■ 홍보 방안

- ① 파워 트위터러를 통해 트위터에 상고법원안에 대한 지지 글 확산
조○, 진○○, 박○○ 등 유명 파워 트위터러 중 접촉 가능한 인물 선정
상고법원 도입 논의 및 장단점을 중립적으로 소개하여, 팔로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홍보 효과 거둘 수 있음
- ② 법관 및 직원, 그 가족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지 글 확산



3. 유튜브(YouTube)

■ 매체 특성 및 현황

- 1분당 100시간 분량의 비디오가 업로드되고 있는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 현재 유튜브에서 ‘상고법원’ 을 입력하면, 상고법원 홍보동영상(약 3만명 검색) 이외 나머지는 비판적인 뉴스나 상고법원 추진 초기의 뉴스들이 주로 검색되고 있음

■ 홍보 방안

- ‘상고법원’ 입력 시, **긍정적인 뉴스 위주의 영상이 검색되도록** 추진 ⇨ 공식 홍보동영상 외에 웹툰, 이미지 전달형 동영상, 우호적 인터뷰 등 다양한 영상물 업로드
- 유튜브 업로드에 적합한 감성 위주의 **흥미유발형 홍보 동영상, 웹툰 등 개발**
- ⇨ 인터넷, 모바일, 소셜로 연계된 이른바 C세대(Contents Generation) 공략

4. 팟캐스트(Podcast)

■ 매체 특성 및 현황

- 오디오 또는 비디오 파일 형태로 뉴스나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 깊이 있는 정보 검색 원하는 대중들에게 애용되고 있음

■ 홍보 방안

- 다양한 시사 주제 팟캐스트 프로그램 중 섭외 가능한 프로그램 선정 후 상고법원에 대한 토론 실시 등 정보 제공하는 방안 검토
- [고려사항①] 유명 팟캐스트 프로그램 섭외 문제 존재
- [고려사항②] 비판 논조를 취하는 팟캐스트 프로그램 성향상, 편파적인 의견 전달, 불확실한 정보 제공, 부정적 여론의 흐름 발생 등 위험 요인 존재

5. 포털(네이버, 다음) 브랜드 검색, SNS 광고 및 각종 이벤트 실시

■ 현황



- 2013. 4.부터 현재까지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 연간 상시 집행 ⇨ 사법부의 정책 및 이미지 홍보 채널로 활용

- SNS 상고법원 영상광고 실시

대법원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광고 집행 후 게시물 노출 및 영상 조회 수 급증

■ 홍보 방안

- 포털 브랜드 검색광고 및 SNS 영상광고 지속 추진

홍보기간 및 영역을 확대하여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음

- 포털에 상고법원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도록 하여 이슈화 추진

- 다양한 참여 이벤트 병행

대법원이 운영하는 SNS 공간에 상고법원과 관련된 삼행시 이벤트, 상고법원의 중요 키워드 6개와 연계한 퀴즈 이벤트 등 실시

IV. 뉴미디어 홍보 콘텐츠(동영상, 웹툰, 포스터) 제작 방안

1. 홍보 동영상 제작 방안

가. 새로 제작할 홍보 동영상의 주안점

■ 1차 홍보 동영상의 미비점 보완에 중점

■ 2차 동영상 제작의 주안점

- 시청자 흥미유발형 콘텐츠 구성 ⇨ 동영상 시작 5초 안에 재미를 느끼도록 함
- 압축된 메시지 전달 ⇨ 가장 강력한 장점 및 기대효과 1~2개 집중 설명
- 단순·간결·세련된 이미지 표출

나. 동영상 제작 컨셉 및 콘텐츠(안)

■ 제작 컨셉의 주안점

- 일반 대중이 타겟이라면 40초 정도가 적정
- 쉬운 내용을 비유적, 감성적으로 표현
- ‘대법원 기능 중 일부를 대체하는 상고법원’이라는 것에 중점을 맞추기보다, 적체된 사건처리를 위한 ‘새로운 법원을 신설’하여 국민의 복리에 기여함을 강조



■ 콘텐츠 1

<p>장면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의 출국심사대 앞으로 사람들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서서 기다렸다가 심사대에 빈자리가 생기면 차례로 심사를 받고 있다. ■ 할아버지, 할머니, 갓난아기, 임산부, 장애인도 같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지루해 하지만, 위 사람들이 특히 힘든 표정이다. ■ 예약한 비행기의 출발시간이 촉박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도 있다. ■ 출국심사대 담당 직원들이 분주하게 심사를 하지만 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p>장면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자기 출입국관리소 직원 1명이 나와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출발시간이 촉박하여 시급한 심사가 필요한 사람 등을 외교관 및 직원 전용 출국심사대로 안내하여 출국 심사를 먼저 처리해 준다. ■ 먼저 처리된 사람들은 행복해 한다. 반면 유심히 이를 지켜보던 나머지 사람들은 표정이 일그러진다. ‘나도 바쁜데...’라며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다.
<p>장면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때 출입국 관리소 직원 10명이 일제히 나타나서 심사대 개수를 10개 더 늘려서 총 13개의 심사대가 도열한다. ■ 심사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줄이 급격히 줄어든다(모두가 행복해하며 기뻐한다).
<p>장면 4 (화면 속도를 빠르게 처리, 그 후 경과를 짐작할 수 있도록만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는 출입국 심사대 앞에 직원 1명이 위치하여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여 시급한 심사가 필요한 사람 등을 특별 심사대로 안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도록 한다. ■ 하지만 일반 심사대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신속히 심사를 받기 때문에 표정이 편안하다.
<p>장면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고법원은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제도입니다.”

■ 콘텐츠 2

<p>장면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고용주가 대법원에 일부러 상고해 놓고 상고심 판결까지 나오면 돈을 주겠다고 한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가게를 비우지 않아 소송을 하였는데 대법원에 일부러 상고해 놓고 상고심 판결이 나오면 비우겠다면서 버티고 있다.”
장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연방대법원 - 대법관 9명, 연간 처리 건수 약 80건, 1인당 처리 건수 약 9건” + 미국 연방대법원 및 대법관 이미지
장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대법원 - 대법관 12명, 연간 처리 건수 약 90건, 1인당 처리 건수 약 8건” + 영국 대법원 및 대법관 이미지
장면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 최고재판소 판사 14명, 연간 처리 건수 약 4,500건, 1인당 처리 건수 약 321건” + 일본 최고재판소 및 최고재판소 판사 이미지
장면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대법원 - 대법관 13명, 연간 처리 건수 약 38,000건, 1인당 처리 건수 약 3,000건, 1일당 대법관 1인 처리 건수 약 12건”, “2002년 약 18,000건, 2014년 약 38,000건,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 우리나라 대법원 및 수많은 사건 기록 이미지
장면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다리기 지친다, 그렇지만 졸속재판도 싫다.” ▪ “더 이상 상고심 제도를 현 상태로 둘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장면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12. 여야 의원 168명(과반수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법 법안 발의” ▪ “2015. 5. 서울지방변호사회(전국 변호사의 73.4% 소속) ‘상고법원 찬성’ 공식 표명”
장면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고법원 설치하는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 “주요 7개국(G7) 중 최고법원 법관이 16명 넘는 나라는 없다. 전원합의가 필수적인 대법원에서 대법관 증원은 대안이 아니다” (이○○ 변호사)
장면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고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도, 상고법원 도입의 열매도 모두 대법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간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 교수)
장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고법원 설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콘텐츠 3

장면 1	▪ 대법원에 재판기록이 점점 쌓여 대법원이 기록으로 가득 차다가 결국 대법원이 폭발함(꿈 꾸는 내용)
장면 2	▪ 알고 보니 꿈인 것을 알고 다행이라는 표정을 짓는 모습
장면 3	▪ 그런데 대법원에 실제 사건 접수를 하러가 보니 정말로 내가 꾸 꿈만큼은 아니지만 사건 기록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접수되고 있는 것을 목격
장면 4	▪ 상고법원이 설치된 후의 모습과 비교 ▪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모습

다. 동영상 제작 방안

■ 홍보팀과 전문 제작 업체와의 CO-OP

■ 제작 의뢰 가능한 외부 전문 업체

● 미디어포스

컨셉이 최대한 신속하게 컨펌되고 촬영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1개월 이내 제작 완료도 가능하다는 입장

기획비용 약 1,000만 원, 제작비용 약 3~4,000만 원(모델 사용 시 추가) 소요 예상

2. 홍보 웹툰 제작 방안

가. 뉴미디어 매체에 적합한 ‘웹툰’ 활용

- ‘웹툰’은 그 형식(만화)상 특징으로 인하여 어렵고 무거운 내용이 라도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매력 있음

나. 유명 웹툰 작가를 통한 홍보

1) 필요성

- 지하철 출퇴근 시간 등을 이용해 유명 웹툰을 보는 직장인들 다수
⇒ 웹툰 작가의 영향력 지대

- 유명 웹툰 작가와 일반 작가 사이에는 전파력에 큰 차이가 있음 ⇨ 유명 웹툰 작가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홍보 효과 발생

2) 섭외 작가 후보

- [후보 작가 ①] 곽○○

- 현재 네이버 웹툰 ‘가우스전자’ 연재 중

- [후보 작가 ②] 김○○

- 현재 네이버 웹툰 ‘생활의 참견’ 연재 중

- [비용 등] ①편당 500만 원 소요, ②스토리 형식으로 편수를 복수 제작할 경우 가격 협의 가능, ③ 1편 제작하는 데에 그리 긴 시간 소요되지 않음(6월 말까지 제작 가능)

3) 웹툰 형식, 컨셉 및 활용 방안

- 형식

- 5편 ~ 10편 정도의 시리즈물을 제작하는 ‘생활툰’ 형식으로 상고법원과 대법원의 업무 과중을 재미있게 그리는 방안 검토

- 컨셉

- 대법관님들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생활툰의 소재로 활용
-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과중한 업무 표현
-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너무 사건이 많아서 상고심 판결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소위 ‘멘붕’에 빠진 당사자의 모습
- 상고법원 제도 신설 이후 제도에 만족하는 당사자의 모습

- 활용 방안

- 전체 계획을 세운 후 연재 형식으로 웹툰을 주기적으로 배포하여 SNS를 통해 확산되도록 함
- 네이버 웹툰 브랜드 광고 추진 검토

‘네이버 웹툰’란에 광고 형식의 웹툰을 게시하는 브랜드 웹툰의 경우, 3개월 노출에 약 3,000만 원 소요

다. 일반인, 대법원 영블로거를 통한 웹툰 제작 병행

3. 홍보 포스터 제작 방안



가. 홍보 포스터 제작, 활용 현황

- '바를 정'을 이용한 1차 포스터 제작
- 현재 이○○ 화백의 작품을 이용한 2차 포스터 제작 중

나. 1, 2차 포스터에 이은 후속 포스터 제작

■ 3차 포스터 제작의 주안점

- 1, 2차 포스터 모두 암시적·이미지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바, 후속 포스터는 직접성과 알기 쉬움을 포인트로 하여 설득·설명 기능을 강화
- 포스터는 한 장에 곧바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특징 ⇨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와 함께 적당한 구호(슬로건)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

■ 3차 포스터 제작(안)

- [방안 ①] 질문과 답변 형태의 포스터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신속한 권리구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 [방안 ②] 질문과 답변 형태의 포스터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충실한 심리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 [방안 ③] 연간 처리 사건 수를 비교하는 그림을 포스터에 삽입한 후 그 옆(위 또는 아래)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배치하는 방법
 - ①신속한 3심 재판, 상고법원의 도입에서 시작됩니다!
 - ②대법원을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 줄 변화의 시작, 상고법원의 도입!
 - ③비정상의 정상화! 상고법원의 도입!
- [방안 ④] 재미있는 구호와 패러디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시킨 뒤 그 내용을 소개하는 방법 ⇨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점이 장점
 -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구호와 이미지를 활용한 “우리 법원이 달라졌어요”라는 제목 하에 상고법원의 장점(신속, 충실한 심리) 강조
 - “그것이 알고 싶다”의 구호와 이미지를 활용한 “그것이 알고 싶다. 왜 상고법원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 하에 상고법원의 장점(신속, 충실한 심리) 강조
 - “무한도전”의 구호와 이미지를 활용한 “상고법원의 무한 도전!”



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 아래 상고법원의 장점(신속, 충실한 심리) 강조

V. 향후 계획

■ 뉴미디어 매체별 홍보 추진

- 즉시 홍보에 착수할 수 있는 매체 선정 후 홍보 실시
- 유명 FB 운영자 등 접촉 ⇨ 상고법원 지지 글 등 게시 부탁
-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SNS를 이용한 상고법원 홍보 참여 권유

■ 뉴미디어 홍보 콘텐츠(동영상, 웹툰, 포스터) 제작 : 6월 말까지

- 외부 업체, 웹툰 작가 활용 방안에 관한 정책 결정 (소요 예산 등 검토)
- 선정된 외부 업체, 웹툰 작가에게 상고법원에 대한 기초 자료 및 기본 홍보 컨셉 제시
- 외부 업체, 웹툰 작가의 복수의 홍보 컨셉 및 콘텐츠 제안
- 홍보팀 회의를 통해 컨셉 및 콘텐츠 최종 선정
- 외부 업체, 웹툰 작가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 콘텐츠 제작 완료

■ 제작된 홍보 콘텐츠의 효과적 활용

- 상고법원 입법 추진 일정 등 고려하여 최적의 배포 시기 검토
- SNS, 인터넷 포털, 지하철 행선기 등 콘텐츠별 적합한 홍보 플랫폼 확정 ⇨ 동영상, 웹툰, 포스터 등 이미지 홍보물 집중 게시로 일거에 여론 확산 도모



뉴미디어를 활용한 상고법원 홍보 방안

2015. 6.

상고법원 뉴미디어 홍보팀

I. 검토 배경

- 상고법원 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한 **다각화·다층화된 홍보전략** 수립
 - 현재까지의 상고법원 홍보는 이성적·관치적 홍보에 치중하는 정책 홍보의 전형적 초기 단계 ⇨ **직관적·감성적·쌍방향 홍보**로 일반 대중의 관심 유인하고 공감대 확산시키는 **심층 홍보** 단계로 나아가야 함
 - 일반 대중에게 확산된 우호적 여론은 법률안 심사권 가진 국회의원들에 대한 간접적 압력이 될 수 있음
 - 다각화·다층화된 전방위 홍보로 상고법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창출·확산 ⇨ 유리한 입법환경 구축
- **[홍보 매체 다각화]** 신문, 방송 등 기존 전통적 매체 이외에 온라인 매체 등 뉴미디어 활용 방안 모색
 - 신문 등 전통 매체를 통한 논리적, 이성적 근거는 변호사, 국회의원 등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일반 국민에게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관심을 끄는데도 한계 있음
 - 개방화된 온라인 Tool과 쌍방향 미디어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홍보 방법 다층화]** 동영상, 웹툰, 포스터 등을 이용한 이미지 홍보로 다양한 여론층 공략
 - 일반 대중의 상고법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쉽고 감성적이며 흥미 위주의 홍보 소재 및 방법** 발굴
 - 텍스트 메시지 전달 방식의 평면적 홍보에 **시각적·입체적 이미지 광고** 등을 가미하여 **전파력·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 강구



II. 뉴미디어 홍보의 기본 방향

1. 홍보 목표

▣ [1차적 목표] 사법부에 대한 호감도 상승시키기

- ①권위를 내려놓고 대중에게 솔직하게 다가가는 모습 표출 ⇨ 다양한 소통행사 사례 등 활용
- ②민생과 직결된 사건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판기관 이미지 표방

▣ [2차적 목표] 상고법원에 대한 이해 제고, 장점 및 기대효과 부각

- 상고법원에 대한 간명한 이미지 전달 ⇨ 너무 많은 상고심 재판 부담
- 상고법원 장점 및 기대효과 ⇨ 현재 상고심 사건의 적체·지연과 대비하여, 신속·충실한 상고심 재판 구현

2. 홍보 타겟 ⇨ 다양한 여론층 공략

▣ [①주요 타겟] 인터넷, SNS 등 뉴미디어 활용에 익숙한 20대, 30대

- 정보 전달력 및 네트워크 능력 탁월한 젊은 세대를 상고법원 메신저로 포섭

▣ [②서브 타겟] 최근 들어 뉴미디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40대 이상 장년층

- 신문 등을 통해 접한 상고법원 메시지에 재미와 흥미가 가미된 감성적 호응 유도

3. 뉴미디어 매체의 기본 특성을 고려한 홍보전략 수립

▣ [1]간결하고 임팩트 강한 콘텐츠에 적합



- 대중의 이목을 한눈에 끌 수 있는 강렬한 홍보 컨셉 및 콘텐츠 발굴
- ②복잡한 내용은 짧게 나누어 반복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
 - 이해하기 쉬운 어휘 및 뉘앙스 사용
 - 일반 대중에게 거부감 없이 스며들 수 있는 홍보 방안 구상
- ③트렌드에 민감
 - 뉴미디어 이용자들의 최근 관심사에 부응
 - 친숙하고 호감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 소재와 방법 활용

III. 뉴미디어 매체 특성별 홍보 방안

1. 페이스북(Facebook)

■ 매체 특성 및 현황

- 개설 시에는 친목 위주였으나, 현재는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 공유를 통해 맞춤형 뉴스 제공원(source)이 되고 있음
-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중 흥미로운 글은 단 하루만에 전세계적인 뉴스가 되기도 함

☑ Ex. 금색-파란색 드레스 논란

- ▶ 지난 2. 26. SNS의 일종인 텀블러에 여성용 드레스 1벌 사진 게시됨
- ▶ 위 여성용 드레스가 금색으로 보이는지, 파란색으로 보이는지를 놓고 페이스북상에서 색깔 논쟁 확산
- ▶ 그 다음날인 2. 27. 언론에까지 소개되면서 투표까지 실시
- ▶ 난데 없는 색깔 논쟁으로 드레스 판매사이트가 특특한 홍보효과 누림

- 신문 등 매체에서 습득한 정보보다 자신의 지인, 친목관계가 있는 사람이 올린 글이나 정보에 우호적으로 반응 ⇨ 영향력 있는 페이스북 운영자를 통해 상고법원안에 대한 지지 글 확산될 경우, 큰 파급력 예상
-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한 친구들간의 글 ‘공유하기’ ⇨ 수평적 여론 확



산 기능

- 파워블로거와 같은 특정 운영자의 글 ‘공유하기’ ⇨ 팔로워들에 대한 수직적 여론 확산 기능

ex) FB 운영자인 문○○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1일 약 800여명 정도가 ‘좋아요’ 내지 ‘공유하기’ 설정

■ 홍보 방안

- ①영향력 있는 법조계 내외의 FB 운영자들을 섭외하여 상고법원에 대한 지지 글 및 논거 확산

[법원 내부] 강○○ 부산지방법원장, 문○○ 부장판사

[법원 외부] 윤○, 강○○ 변호사, 배우 김○○, 윤○○, 송○○, 김○○, 윤○○ 등

- 윤 변호사의 게시글은 전문성 있으면서도 재미있다는 소문 퍼지며 법조인들 중심으로 큰 인기 얻고 있음
- 강 변호사의 경우, 이미 JTBC 썰전 프로그램에서 상고법원 찬성 입장 표명
- 배우 김○○(서울중앙지법 소통행사 진행), 윤○○(남편 판사), 송○○(부인 판사), 김○○(인신보호제도 TV 광고 출연), 윤○○(국민참여재판 TV 광고 출연) 등은 사법부에 친화적이면서 신뢰 이미지 갖춘 연예인 ⇨ 상고법원 이슈화에 큰 기여 예상
- ②법관 및 직원, 그 가족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지 글 공유하기 운동
상고법원에 대한 지지 글 및 논거를 법관이나 직원들이 가입한 페이스북, 각종 카페 등을 통해 확산
일반인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휘와 감성적 표현 사용
- ex) ①대법관 1인당 3,000건, 1건에 40분 ⇨ ②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



는 재판 현실 ⇨ ③제대로 된 재판을 위해서는 개혁 필요 ⇨ ④대법관 늘리자는 것은 1년 내내 청문회만 하자는 말, 정치인들 싸움 벌이만 되고 진짜 재판은 뒷전 됨

2. 트위터(Twitter)

■ 매체 특성 및 현황

-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영향력 있는 트위터러의 글은 팔로워들을 통해 순식간에 전국적인 파급 효과
- 사회 민감 이슈 등에 관하여 주도적 트위터러의 의견 확산 통로가 되고 있음
- 파급 속도와 쟁점화 측면에서는 페이스북보다 강력한 효과 발휘
- 리트윗과 해시태그 기능으로 초스피드의 정보 네트워크 구축

■ 홍보 방안

- ①파워 트위터러를 통해 트위터에 상고법원안에 대한 지지 글 확산
조○○, 진○○, 박○○ 등 유명 파워 트위터러 중 접촉 가능한 인물 선정
비록 상고법원에 대한 찬성 의견이 아니더라도, 상고법원 도입 논의 및 장단점을 중립적으로 소개하여, 팔로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홍보 효과 거둘 수 있음
- ②법관 및 직원, 그 가족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지 글 확산
트위터를 자주 사용하는 법관 및 직원들의 정보 확산력 활용(기본 방법은 페이스북의 경우와 동일)
다만, 파워 트위터러가 아닌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 개진은 트위터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는데 한계 있을 수 있음



3. 유튜브(YouTube)

▣ 매체 특성 및 현황

- 1분당 100시간 분량의 비디오가 업로드되고 있는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 1달 방문자 10억 명 이상으로 추산
- 현재 유튜브에서 ‘상고법원’을 입력하면, 상고법원 홍보동영상(약 3만 명 검색) 이외 나머지는 비판적인 뉴스나 상고법원 추진 초기의 뉴스들이 주로 검색되고 있음

▣ 홍보 방안

- ‘상고법원’ 입력 시, **긍정적인 뉴스 위주의 영상이 검색되도록 추진**
⇒ 공식 홍보동영상 외에 웹툰, 이미지 전달형 동영상, 우호적 인터뷰 등 다양한 영상물 업로드
- 유튜브 업로드에 적합한 감성 위주의 **흥미유발형 홍보 동영상, 웹툰 등 개발**
- ⇒ 인터넷, 모바일, 소셜로 연계된 이른바 C세대(Contents Generation) 공략

C세대

- ▶ 수용자 차원에 머무르던 컴퓨터 세대가 인터넷·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 기기를 통해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창조해 내는 세대로 발전하여 등장한 개념
- ▶ 기본적으로 멀티스크린을 통해 정보를 소비
- ▶ 스마트폰 보유율 76%,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시청 비율 74%

4. 팟캐스트(Podcast)

▣ 매체 특성 및 현황

- 오디오 또는 비디오 파일 형태로 뉴스나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 기존 라디오 프로그램 등과 달리 방송시간에 맞춰 들을 필요가 없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 구독 등록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관심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시청할 수 있음
- 깊이 있는 정보 검색 원하는 대중들에게 애용되고 있음

■ 홍보 방안

- 다양한 시사 주제 팟캐스트 프로그램 중 **섭외 가능한 프로그램 선정** 후 상고법원에 대한 **토론 실시 등 정보 제공**하는 방안 검토
ex) 팟캐스트 정치 및 시사 부분에서 인지도가 높은 『노○○의 정치카페』(진행 : 노○○, 유○○, 진○○) 등
- [고려사항①] 유명 팟캐스트 프로그램의 과급력은 높으나, 진행자 중 상고법원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 및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함 ⇨ **섭외 문제 존재**
- [고려사항②] 우호적인 입장의 진행자 섭외하더라도, 정치 및 시사 이슈에 관하여 신랄한 비판 논조를 취하는 팟캐스트 프로그램 성향상, 토론 과정에서 **편파적인 의견 전달, 불확실한 정보 제공, 부정적 여론의 흐름 발생 등 위험 요인 존재함**

5. 포털(네이버, 다음) 브랜드 검색, SNS 광고 및 각종 이벤트 실시

■ 현황

- 2013. 4.부터 현재까지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 연간 상시 집행 ⇨ 사법부의 정책 및 이미지 홍보 채널로 활용
- SNS 상고법원 영상광고
 - ① 대법원 페이스북
- 광고 집행 후 게시물 노출 및 영상 조회 수 급증

	광고 전	광고 후	증감
게시물 노출	2,400	3,671,640	▲ 3,669,240
영상 조회 수	1,312	12,624	▲ 11,312
영상게시물 좋아요	34	419	▲ 385

■ 대법원 페이스북 페이지 팬(좋아요) 수 1,126명 증가

- 댓글을 통해 비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직접 답변해주는 등 상고법원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계기 마련

4심제.....
 좋아요 · 댓글 달기 · 2 · 4월 2일 오전 10:29

대한민국 대법원(Supreme Court of Korea) 상고법원 설치 법안에 포함된 '특별상고'는 헌법에 위배되거나 대법원 관례와 상반되는 상고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상고제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하는 현행의 '재심'제도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즉, 지금의 3심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

좋아요 · 7 · 님이 댓글을 남김 [?] · 4월 2일 오전 11:09

판사수를 늘리면되는거지 법원을 분리시킬필요까지야 그리고 이제 명실상부 4심제
 상부 4심제
 좋아요 · 댓글 달기 · 2 · 5월 4일 오후 8:00

대한민국 대법원(Supreme Court of Korea)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상고법원 설치 법안에 포함된 특별상고는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하는 현행의 '재심'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4심제의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기사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윤곽 드러난 '상고법원 도입 법안' 살펴보니
 윤곽 드러난 '상고법원 도입 법안' 살펴보니
 LAWTIMES.CO.KR

좋아요 · 미리 보기 삭제 · 1 · 님이 댓글을 남김 [?] · 5월 6일 오전 9:37

현재 민사에서 상고사건이 많아진 것은 하급심 사실심이 사건을 깊이 심리하지 않고 로비를 받아 재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심에서 공정하게 깊이 심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좋아요 · 댓글 달기 · 6 · 5월 6일 오전 11:42

대한민국 대법원(Supreme Court of Korea) 네~!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사실심을 더욱더 충실히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 과정도 함께 지켜봐주세요~!
<https://www.facebook.com/scourtukorea/posts/1034435899917102>



② 대법원 트위터

■ 광고 집행 후 게시물 노출 및 영상 조회 수, 리트윗 등 급증

	광고 전	광고 후	증감
게시물 노출	6,230	835,000	▲ 828,770
영상 조회 수	12	2,811	▲ 2,799
영상게시물 리트윗	9	311	▲ 302
영상게시물 관심글	8	229	▲ 221

■ 팔로워 약 330명 이상 증가

③ 대법원 유튜브

■ 광고 집행 후 게시물 노출 및 영상 조회 수, 리트윗 등 급증

	광고 전	광고 후	증감
게시물 노출	301	205,270	▲ 204,969
영상 조회 수	301	28,054	▲ 27,753

■ 홍보 방안

● 포털 브랜드 검색광고 및 SNS 영상광고 지속 추진

매체 특성상 시간적 제약 없이 상시 노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도 이용 가능 ⇨ 홍보기간 및 영역을 확대하여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음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효적 광고 방안 및 콘텐츠 발굴

● 포털에 상고법원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도록 하여 이슈화 추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뉴미디어 오피니언 리더들이 상고법원에 대해서 자극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상대적으로 상고법원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을 때 반대 의견에 대한 신랄한 비판, 강력한 지지 의견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리는 타이밍, 이러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의 섭외가 관건

- 다양한 참여 이벤트 병행

대법원이 운영하는 SNS 공간에 상고법원과 관련된 삼행시 이벤트,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 이벤트, 상고법원의 중요 키워드 6개와 연계한 퀴즈 또는 상고법원 포스터 관련 퀴즈 이벤트 등 실시

당첨자 선정하여 기념품 지급하는 방안 등 검토

IV. 뉴미디어 홍보 콘텐츠(동영상, 웹툰, 포스터) 제작 방안

1. 홍보 동영상 제작 방안

가. 새로 제작할 홍보 동영상의 주안점

- ▣ 상고법원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유인하고 공감대를 확산

- ▣ **1차 홍보 동영상의 미비점 보완에 중점**

- 1차 동영상의 장·단점

[장점] 설명이 잘 되어 있고 디자인이 세련됨

[단점] 초반 흡입력 부족으로 관심 집중되지 않음, 너무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자 함

- 2차 동영상 제작의 주안점

시청자 흥미유발형 콘텐츠 구성 ⇨ 동영상 시작 5초 안에 재미를 느끼도록 함

압축된 메시지 전달 ⇨ 가장 강력한 장점 및 기대효과 1~2개 집중 설명

단순·간결·세련된 이미지 표출

▣ 성공적인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한 세부 포인트 점검

- ①동영상이 홍보 목표에 부합하는가?
- ②단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되어 있는가?(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아서 이를 다 포함하려다 보면 지루한 광고가 됨)
- ③문안이 간결하고 비디오(영상)와 조화를 이루는가?
- ④오디오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의미 전달이 이루어지는가?
- ⑤15 ~ 40초까지의 다양한 길이로 편집이 가능한가?(다양한 매체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⑥약간의 수정으로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 활용이 가능한가?

나. 참고할 만한 정책 홍보 동영상

▣ [참고 1]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홍보 동영상 1

- [특징] ①강렬한 메시지를 이미지(심각한 얼굴로 신문 보는 모습, 한숨 쉬는 모습, 시계의 초침이 바빠 움직이는 모습)와 함께 보여줌. ②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위기감을 고조시킴, ③첫 장면이 흥미를 유발시킴





▣ [참고 2]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홍보 동영상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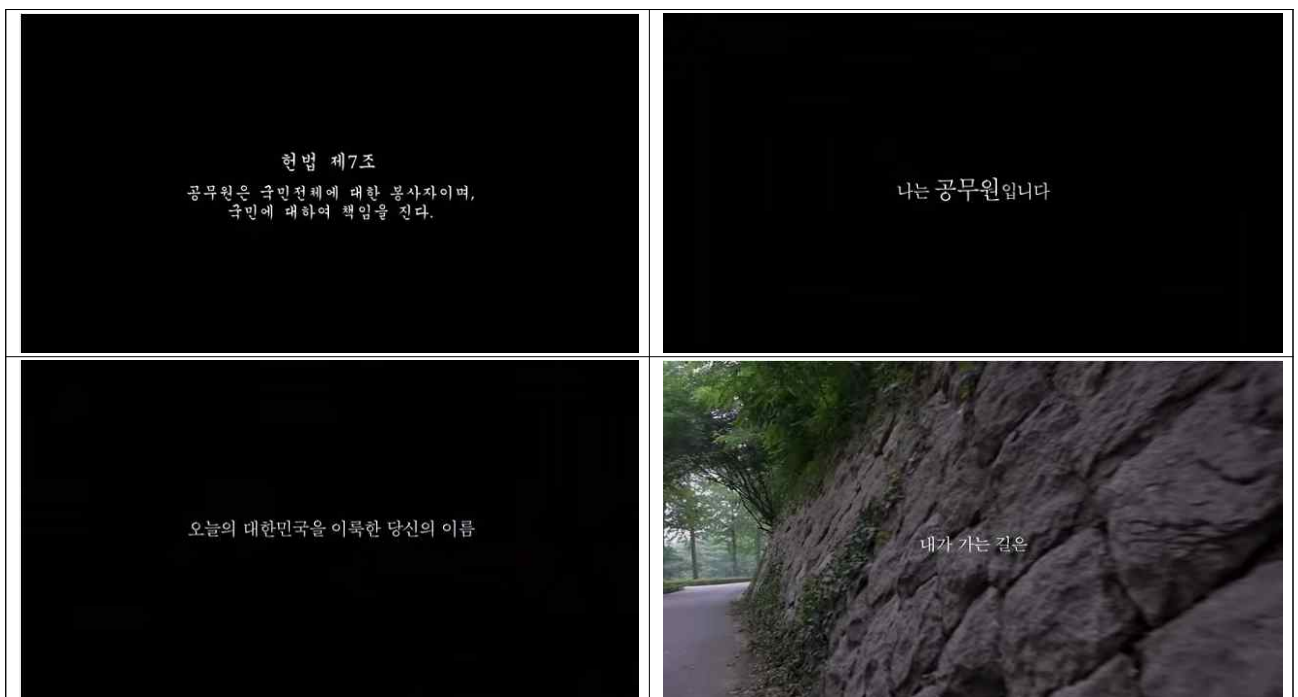
- [특징] ①강렬한 메시지를 이미지(등산을 다녀오는 노인의 뒷모습)와 함께 보여줌, ②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위기감을 고조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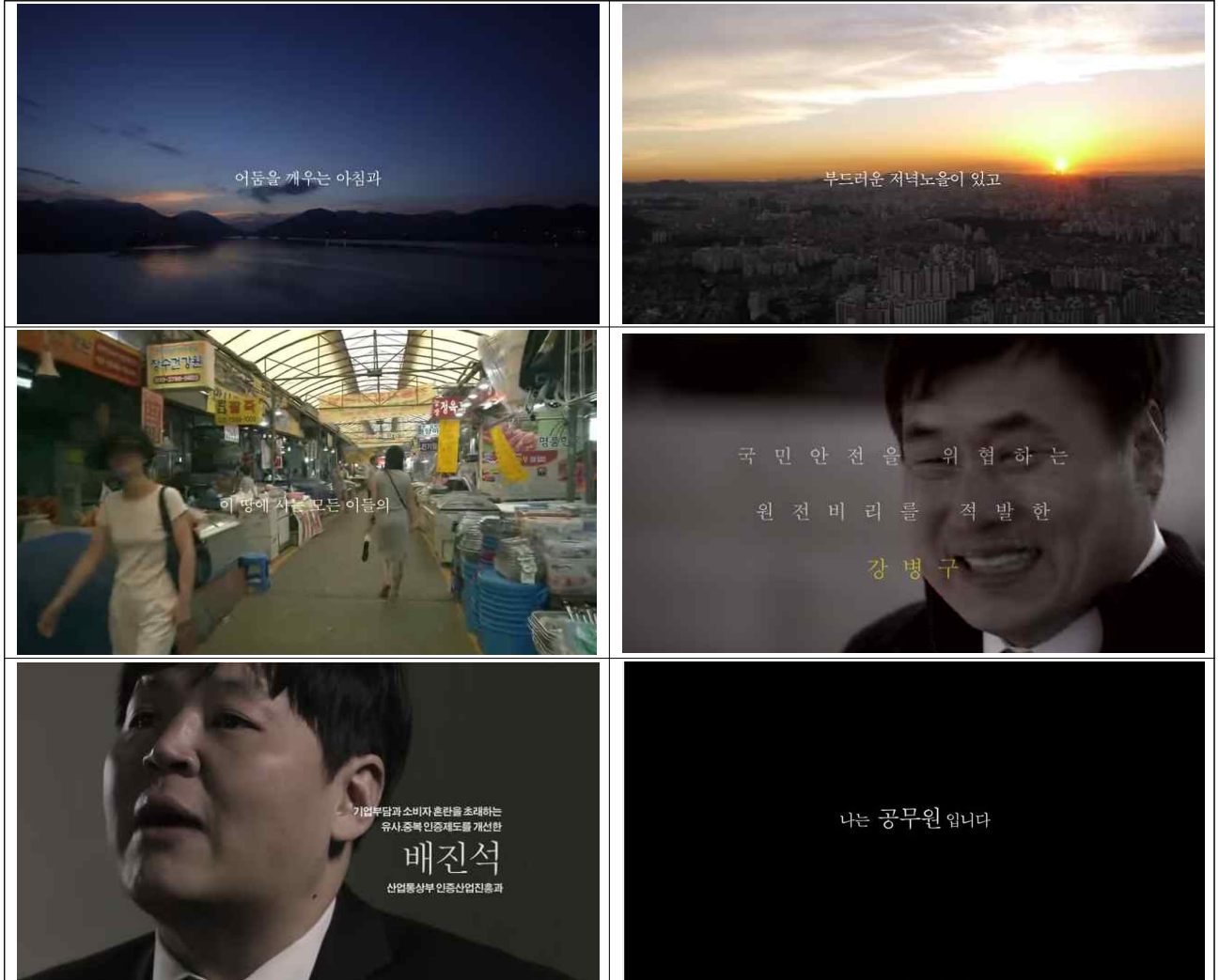




▣ [참고 3] '나는 공무원입니다' 동영상

- [특징] 메시지를 중간중간 삽입하면서 평범한 공무원들을 주제로 하여 감성적으로 홍보





▣ [참고 4] 일본 어린이재단 광고

- [특징]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흥미를 유발하는 스토리를 보여준 뒤 마지막으로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함





▣ [참고 5] 대법원 제작 국민참여재판 홍보 동영상

- [특징]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구성과 편집, 법정 드라마에 변호사로 출연한 연예인을 활용하여 시선을 집중시킴.





다. 동영상 제작 컨셉 및 콘텐츠(안)

▣ 제작 컨셉의 주안점

- 일반 대중이 타겟이라면 40초 정도가 적정 (1분 이상일 경우, 집중력 떨어질 수 있음)
- 최초 5초 이내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재 활용
- 여러 메시지를 한번에 담으려고 하지 말고 쉬운 내용을 비유적, 감성적으로 표현
- ‘대법원 기능 중 일부를 대체하는 상고법원’이라는 것에 중점을 맞추기보다, 적체된 사건처리를 위한 ‘새로운 법원을 신설’ 하여 국민의 복리에 기여함을 강조

▣ 콘텐츠 1

장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의 출국심사대 앞으로 사람들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서 기다렸다가 심사대에 빈자리가 생기면 차례로 심사를 받고 있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아버지, 할머니, 갓난아기, 임산부, 장애인도 같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지루해 하지만, 위 사람들이 특히 힘든 표정이다. ■ 예약한 비행기의 출발시간이 촉박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도 있다. ■ 출국심사대 담당 직원들이 분주하게 심사를 하지만 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p style="text-align: center;">장면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자기 출입국관리소 직원 1명이 나와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출발시간이 촉박하여 시급한 심사가 필요한 사람 등을 외교관 및 직원 전용 출국심사대로 안내하여 출국심사를 먼저 처리해 준다. ■ 먼저 처리된 사람들은 행복해 한다. 반면 유심히 이를 지켜보던 나머지 사람들은 표정이 일그러진다. ‘나도 바쁜데...’라며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장면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때 출입국 관리소 직원 10명이 일제히 나타나서 심사대 개수를 10개 더 늘려서 총 13개의 심사대가 도열한다. ■ 심사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줄이 급격히 줄어든다(모두가 행복해하며 기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장면 4 (화면 속도를 빠르게 처리, 그 후 경과를 짐작할 수 있도록만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는 출입국 심사대 앞에 직원 1명이 위치하여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여 시급한 심사가 필요한 사람 등을 특별 심사대로 안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도록 한다. ■ 하지만 일반 심사대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신속히 심사를 받기 때문에 표정이 편안하다.
<p style="text-align: center;">장면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고법원은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제도입니다.”



■ 컨텐츠 2

장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 환자가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사람이 매우 많고 대기 줄이 매우 김 ■ 알고 보니 감기 환자, 코막힘 환자 등 가벼운 병명의 환자들이 모두 종합병원 응급실로 와 있음 ■ 고통이 심해서 빨리 진료 받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대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렵다고 대답함
장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실 전문의가 갑자기 등장 ■ 환자의 부상 정도를 살핀 후 종합병원 응급실이 아닌 경험이 풍부한 다른 전문의에게 보낼 건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설명 ■ 환자들이 수궁하며(고개를 끄덕이며) 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가서 전문의에게 진찰 받음
장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 등장한 응급환자가 곧바로 치료받을 수 있어 만족함 ■ 수궁하고 다른 병원 전문의에게 간 다른 환자들도 적절한 진료와 처방에 만족함
장면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고법원은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제도입니다.”

■ 컨텐츠 3

장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고용주가 대법원에 일부러 상고해 놓고 상고심 판결까지 나오면 돈을 주겠다고 한다.” ■ “상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가게를 비우지 않아 소송을 하였는데 대법원에 일부러 상고해 놓고 상고심 판결이 나오면 비우겠다면서 버티고 있다.”
장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연방대법원 - 대법관 9명, 연간 처리 건수 약 80건, 1인당 처리 건수 약 9건” + 미국 연방대법원 및 대법관 이미지
장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대법원 - 대법관 12명, 연간 처리 건수 약 90건, 1인당 처리 건수 약 8건” + 영국 대법원 및 대법관 이미지



장면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 최고재판소 판사 14명, 연간 처리 건수 약 4,500건, 1인당 처리 건수 약 321건” + 일본 최고재판소 및 최고재판소 판사 이미지
장면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대법원 - 대법관 13명, 연간 처리 건수 약 38,000건, 1인당 처리 건수 약 3,000건, 1일당 대법관 1인 처리 건수 약 12건”, “2002년 약 18,000건, 2014년 약 38,000건,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 우리나라 대법원 및 수많은 사건 기록 이미지
장면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다리기 지친다, 그렇지만 졸속재판도 싫다.” “더 이상 상고심 제도를 현 상태로 둘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장면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 12. 여야 의원 168명(과반수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법 법안 발의” “2015. 5. 서울지방법변호사회(전국 변호사의 73.4% 소속) ‘상고법원 찬성’ 공식 표명”
장면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고법원 설치하는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회장 김○○) “주요 7개국(G7) 중 최고법원 법관이 16명 넘는 나라는 없다. 전원합의가 필수적인 대법원에서 대법관 증원은 대안이 아니다” (이○○ 변호사)
장면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고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도, 상고법원 도입의 열매도 모두 대법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간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 교수)
장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고법원 설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콘텐츠 4

장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법원에 재판기록이 점점 쌓여 대법원이 기록으로 가득 차다가 결국 대법원이 폭발함(꿈 꾸는 내용)
장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고 보니 꿈인 것을 알고 다행이라는 표정을 짓는 모습



장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런데 대법원에 실제 사건 접수를 하러가 보니 정말로 내가 꿈만같은 아니지만 사건 기록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접수되고 있는 것을 목격
장면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고법원이 설치된 후의 모습과 비교■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모습

라. 동영상 제작 방안

▣ 홍보팀과 전문 제작 업체와의 CO-OP

- 외부 제작 업체의 정책 홍보 동영상 제작 관련 전문성 활용
- 상고법원 기초 자료 제공 → 컨셉 공동 구상 → 제작 → 적절한 홍보 매체 발굴의 단계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 제작 의뢰 가능한 외부 전문 업체

○○기획, ○○○○, ○○○○, ○○○○

TV 광고를 전제로 하여 高퀄리티 영상 제작만 수주(정규 방송매체에 집행되지 않는 광고는 제작하지 않음)

광고비 역시 상당히 고액에 이르고 제작 기간도 다소 장기간임 ⇨ 뉴미디어 활용 홍보 전략상 부적합

○○○○

TV 외 뉴미디어에 활용할 수 있는 광고도 제작

[1차 접촉 결과] 1달 이내에 동영상 자체를 만들 수는 있으나, 좋은 아이디어에 질 높은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

○○○○○



TV 외 뉴미디어에 활용할 수 있는 광고도 제작

동영상 외에 필요한 홍보물을 기획하는 대행사 역할도 수행

통상 동영상 1개 제작에 1.5개월이 소요되는데 컨셉이 최대한 신속하게 컨펌되고 촬영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1개월 이내 제작 완료도 가능하다는 입장

기획비용 약 1,000만 원, 제작비용 약 3~4,000만 원(모델 사용 시 추가) 소요 예상. 다만, 시리즈로 제작할 경우 초기 기획단계에서 미리 전체 기획이 이루어질 경우 편당 단가는 더 낮아질 수 있음

▣ 외부 업체 선정 후 제작 착수

2. 홍보 웹툰 제작 방안

가. 뉴미디어 매체에 적합한 ‘웹툰’ 활용

- ‘웹툰’은 그 형식(만화)상 특징으로 인하여 어렵고 무거운 내용이라도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매력 있음
- 상고법원에 대한 홍보가 국민 시각에서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으므로, 웹툰 등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 있음
- 또한, 웹툰은 사법부 구성원이 심리적 부담감 없이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를 통하여 제3자에게 이를 용이하게 전달·전파할 수 있음

나. 유명 웹툰 작가를 통한 홍보

1) 필요성

- ▣ 지하철 출퇴근 시간 등을 이용해 유명 웹툰을 보는 직장인들 다수 ⇨ 웹툰 작가의 영향력 지대

- ex ① 조○의 ‘마음의 소리’에 나온 ‘차도남’이라는 단어 ⇨ 순식

간에 전국적 유행어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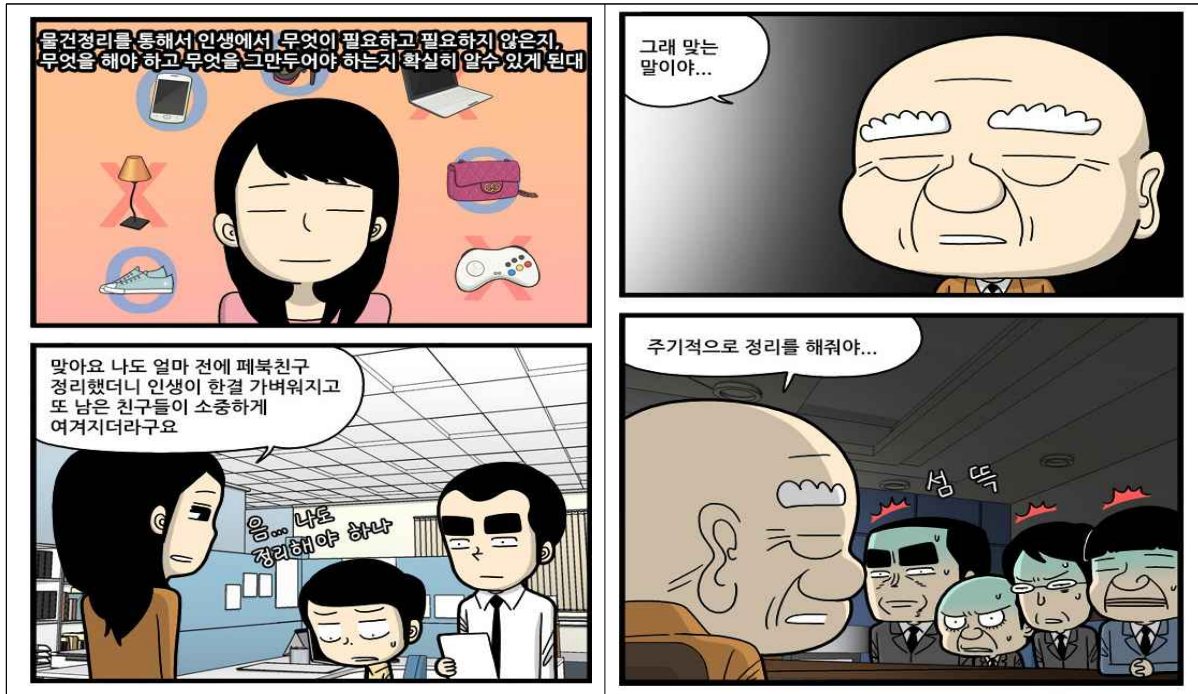
- ex ②) 윤○○의 미생 ⇨ 전국 직장인들이 일상에서 인용
- ▣ 유명 웹툰 작가와 일반 작가 사이에는 전파력에 큰 차이가 있음 ⇨ 유명 웹툰 작가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홍보 효과 발생
- 네티즌들은 필치만으로도 유명 작가의 웹툰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관심을 보임 ⇨ 대기업들이 유명 웹툰 작가에게 고액의 광고료를 지급하면서 광고를 하는 이유
- 유명 작가의 웹툰은 주요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에 게시될 확률 높음
- ▣ 유명 웹툰 작가를 섭외하여 웹툰, 홍보 애니메이션 등 제작
- 유명 작가의 이름을 포털에 검색하는 것만으로 웹툰 등 제작 사실이 검색되도록 함 ⇨ 흥미를 갖고 해당 홍보물 클릭할 수 있도록 유도

2) 섭외 작가 후보

▣ [후보 작가 1] 곽○○

- 현재 네이버 웹툰 ‘가우스전자’ 연재 중





- ‘생활툰’ 형식으로 제작하기에 적합
- [작가 접촉 결과] ① 편당 500만 원 소요, ② 스토리 형식으로 편수를 복수 제작할 경우 가격 협의 가능, ③ 1편 제작하는 데에 그리 긴 시간 소요되지 않음(6월 말까지 충분히 제작 가능)

■ [후보 작가 2] 김○○

- 현재 네이버 웹툰 ‘생활의 참견’ 연재 중





- [작가 접촉 결과] ① 편당 500만 원 소요, ② 스토리 형식으로 편수를 복수 제작할 경우 가격 협의 가능, ③ 1편 제작하는 데에 그리 긴 시간 소요되지 않음(6월 말까지 충분히 제작 가능)

■ [후보 작가 3] 이○○

- 현재 네이버 웹툰 ‘유미의 세포들’ 연재 중





- [작가 접촉 결과] ① 편당 600만 원 소요, ② 인지도 있는 작가이기는 하나, 현재 연재 중인 작품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작에 착수하지 않는다고 함 ⇨ 부적합

3) 웹툰 형식, 컨셉 및 활용 방안

■ 형식

- 5편 ~ 10편 정도의 시리즈물을 제작하는 ‘생활툰’ 형식으로 상고법원과 대법원의 업무 과정을 재미있게 그리는 방안 검토

■ 컨셉

- 대법관님들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생활툰의 소재로 활용

①대법관이 될 때와 6년 뒤 퇴임하실 때를 비교하여 훨씬 늙어 보이는 모습, ②주말에도 김밥 사들고 와서 기록 보면서 시간 보내시는 모습, ③ 6년 내내 기록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김○○ 대법관님 언론보도 내용 활용, ④일을 너무나 많이 해서 퇴직 후 어떠한 일도 하고 싶지 않다는 전○○ 대법관님 관련 에피소드, ⑤아무리 시간을 투입해도 도저히 숙고할 시간이 나지 않고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김○○ 대법관님 언론 보도 내용 등



-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과중한 업무 표현**

①주말, 휴일 없이 일하는 것은 당연하고 운동할 시간도 없어서 식사 후 대법관 청사를 걷는 것이 유일한 취미라는 에피소드 등, ②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기록을 너무 많이 봐서 ‘기록 넘기기 및 기록에서 중요 내용 파악하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늘 미안하고 공수표를 날리기’에 관한 <생활의 달인>이 되었다는 방식의 생활툰

- **대법관님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가정에서도 소위 ‘바가지’를 긁히고 (일만 하느라 집에 안 들어온다고) 외부에서도 ‘비판받는 모습(상고심 판결이 너무 늦다고)’에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

-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너무 사건이 많아서 상고심 판결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소위 ‘멘붕’에 빠진 당사자의 모습**

- **상고법원 제도 신설 이후 제도에 만족하는 당사자의 모습**

“선고기일통지서나 상고법원 판결을 받고 ‘벌써 판결선고기일이 잡힌 거야?’, ‘우와 2개월만에 상고심 판결이 나오다니!’ 하면서 놀라는 모습과 과거를 회상하면서 상고법원 설치 전후를 자연스럽게 대비하는 모습

- **미국, 일본의 경우 상고법원 판사가 매우 적고 상고심이 다루는 사건의 수가 매우 적다는 점과 우리나라 현실을 비교**

- **활용 방안**

- **전체 계획을 세운 후 연재 형식으로 웹툰을 주기적으로 배포하여 SNS를 통해 확산되도록 함**

예컨대 총 10편 계약한 후, 2주에 1편씩 20주(5개월)에 걸친 웹툰 제작 및 활용

- **네이버 웹툰 브랜드 광고 추진 검토**



웹툰은 ‘네이버 웹툰’에 게재되는지 여부가 홍보 효과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

‘네이버 웹툰’란에 광고 형식의 웹툰을 게시하는 **브랜드 웹툰**의 경우, 3개월 노출에 약 3,000만 원 소요

다. 일반인, 대법원 영블로거를 통한 웹툰 제작 병행

▣ 일반인 웹툰 작가 활용

- 네이버 『베스트 만화가』, 피키캐스트 『피키툰』에 자유 연재를 통해 프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일반인 작가** 섭외하는 방안
- 일반인 작가 중에도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는 작가가 있고, 유명 작가에 비해 제작료가 저렴하다는 점 고려

▣ 대법원 영블로거 웹툰 제작

- 현재 영블로거들이 블로그에 웹툰을 제작하여 연재하고 있음
- 저렴한 비용(편당 5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웹툰 제작 가능

3. 홍보 포스터 제작 방안

가. 홍보 포스터 제작, 활용 현황

▣ ‘바를 정’을 이용한 1차 포스터 제작

- 외부 업체 활용하여 300만 원의 비용으로 제작
- 세련된 이미지에 의미를 담을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널리 확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재 이○○ 화백의 작품을 이용한 2차 포스터 제작 중

나. 1, 2차 포스터에 이은 후속 포스터 제작

▣ 3차 포스터 제작의 주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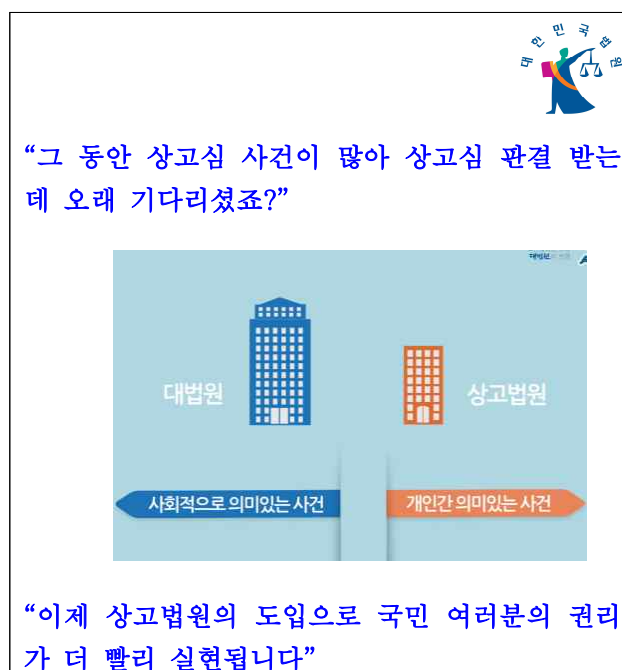
- 1, 2차 포스터 모두 암시적·이미지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바, 후속 포스터는 직접성과 알기 쉬움을 포인트로 하여 설득·설명 기능을 강화
- 포스터는 한 장에 곧바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특징 ⇨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와 함께 적당한 구호(슬로건)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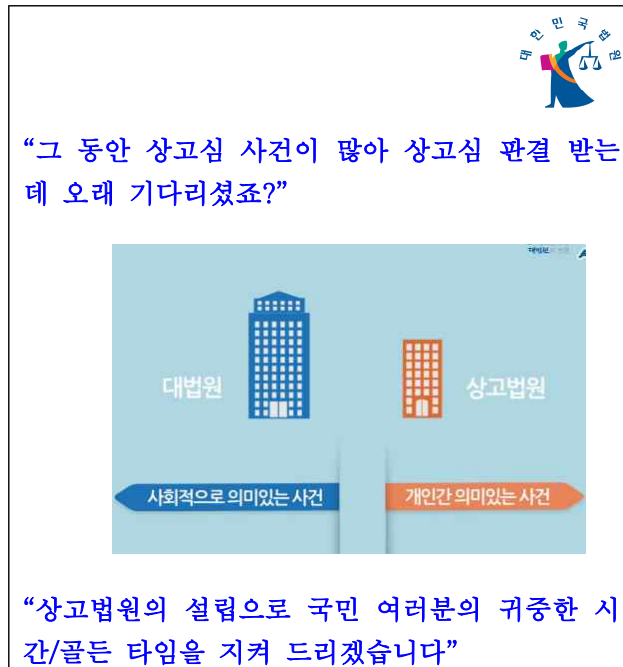
■ 3차 포스터 제작(안)

- [방안 1] 질문과 답변 형태의 포스터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신속한 권리구제 강조 방안)

①포스터 상단 “상고심 사건이 많아 상고심 판결 받는 데에 많이 기다리셨죠?” 배치, ②포스터 가운데 상고법원 설치 관련 이미지 삽입, ③포스터 하단에 상단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상고법원 도입으로 여러분의 권리는 더 빨리 실현됩니다.”, “상고법원의 설립으로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골든타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시] 아래 포스터는 상고법원 동영상에서 따온 것으로, 안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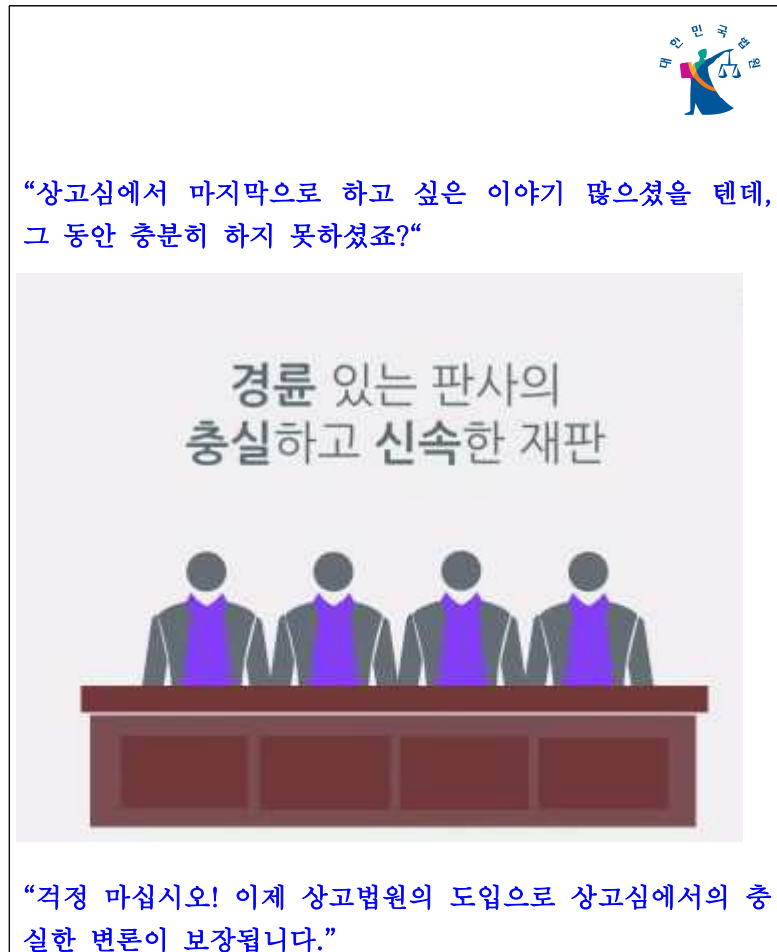




● [방안 ②] 질문과 답변 형태의 포스터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충실한 심리 강조 방안)

①포스터 상단 “상고심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셨을 텐데 충분히 하지 못하셨죠?”, ②포스터 가운데 상고법원 설치 관련 이미지 삽입 후, ③하단에 “걱정 마십시오! 상고법원 도입으로 상고심에서의 충실한 변론이 보장됩니다.”

[예시] 아래 포스터는 상고법원 동영상에서 따온 것으로, 안에 불과



- [방안 ③] 연간 처리 사건 수를 비교하는 그림을 포스터에 삽입한 후 그 옆(위 또는 아래)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배치하는 방안 (대법원 업무 부담과 더 이상 상고제도 개선을 지체할 수 없다는 위기, 시급성을 강조하는 방안)

- ①신속한 3심 재판, 상고법원의 도입에서 시작됩니다!
- ②대법원을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 줄 변화의 시작, 상고법원의 도입!
- ③비정상의 정상화! 상고법원의 도입!

[예시] 아래 포스터는 상고법원 동영상에서 따온 것으로, 안에 불과

<p>연간 처리 사건 수</p> <p>미국 77건, 영국 86건, 일본 4,574건, 한국 38,000건</p>	<p>10년간 2배 이상 증가</p> <p>상고사건</p> <p>약 1만 8천 (2002), 약 3만 8천 (20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 상고법원의 도입으로 대법원을 국민 여러 분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 비정상의 정상화! 상고법원의 도입에서 시작됩니다!

- [방안 ④] 재미있는 구호와 패러디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시킨 뒤 그 내용을 소개하는 방안 ⇨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점이 장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구호와 이미지를 활용한 “우리 법원이 달라졌어요”라는 제목 하에 상고법원의 장점(신속, 충실한 심리) 강조

“그것이 알고 싶다”의 구호와 이미지를 활용한 “그것이 알고 싶다. 왜 상고법원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 하에 상고법원의 장점(신속, 충실한 심리) 강조

“무한도전”의 구호와 이미지를 활용한 “상고법원의 무한 도전!”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 아래 상고법원의 장점(신속, 충실한 심리) 강조

V. 향후 계획

▣ 뉴미디어 매체별 홍보 추진

- 즉시 홍보에 착수할 수 있는 매체 선정 후 홍보 실시



-
- 유명 FB 운영자 등 접촉 ⇨ 상고법원 지지 글 등 게시 부탁
 -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SNS를 이용한 상고법원 홍보 참여 권유
- 뉴미디어 홍보 콘텐츠(동영상, 웹툰, 포스터) 제작 : 6월 말까지
- 외부 업체, 웹툰 작가 활용 방안에 관한 정책 결정 (소요 예산 등 검토)
 - 선정된 외부 업체, 웹툰 작가에게 상고법원에 대한 기초 자료 및 기본 홍보 컨셉 제시
 - 외부 업체, 웹툰 작가의 복수의 홍보 컨셉 및 콘텐츠 제안
 - 홍보팀 회의를 통해 컨셉 및 콘텐츠 최종 선정
 - 외부 업체, 웹툰 작가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 콘텐츠 제작 완료
- 제작된 홍보 콘텐츠의 효과적 활용
- 상고법원 입법 추진 일정 등 고려하여 최적의 배포 시기 검토
 - SNS, 인터넷 포털, 지하철 행선기 등 콘텐츠별 적합한 홍보 플랫폼 확정
⇨ 동영상, 웹툰, 포스터 등 이미지 홍보물 집중 게시로 일거에 여론 확산 도모 [끝]

6월 추진 전략

2015. 6. 4.

사법정책실

1. 변협 및 지방변회 상황

가. 변협

▣ 6/6 협의회 개최

● 주요 안건

-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 / 사시 존치 문제
-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방안 / 경유 프로그램 통일 및 관련 지침 제정 등

● 추가 예상 안건

- 국선전담제도 개선 (충북)
- 상고법원 반대 공동 성명 (변협, 부산 . 울산 . 경남)

▣ 6/9 대구, 대전변회 방문

▣ 6/12 경기중앙변회 방문

▣ 6/19 제주변회 방문

나. 지방변회 상황

1) 목표

- ▣ 1차 : 6/6 협의회를 거치면서 반대 공동 성명 가담 저지
- ▣ 2차 : 6/19경까지 거점 지방변회를 중심으로 찬성 성명 발표 유도

2) 현황

▣ 서울 / 부산 . 울산 . 경남

▣ 인천

- 1차 찬반투표 : 참여율 저조, 찬성 많이 나옴

- 2차 진행 중 → 6/6 협의회 이전 결과 나올 예정
 - 현재로서는 찬성이 다수이므로 협의회에서 찬성 입장 표명 예정
- 찬성 성명 요청에 대해 현재로서는 유보

■ 경기중앙

- 신중 입장, 반대성명에 참여하지는 않을 분위기

■ 경기북부

- 찬성 입장이나 찬성 성명에는 소극적 / 반대성명에는 불참 의사
- 수도권 회장들이 반대 성명에 소극적이어서 6/6 협의회에서 연명으로 반대 성명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부산회장도 성명 소극 분위기 감지 중

■ 강원

- 반대 성명 불참 요청 → 회장은 긍정적 답변

■ 대전

- 6/4까지 설문조사 중
- 대전에서 반대해 달라는 하○○ 회장의 요청에 대하여는 소극 응답함
- 6/3자 이사회에서 회장 발언 (첩보)
 - 현재까지 결과, 찬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반대가 약간 많은 편이다.
 - 이 정도는 변회가 찬반 입장을 표명할 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 이사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었고, 이사회는 종료되었음
-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결과
 - 반대 : 찬성 = 2 : 1, 표 차이는 최소 13명 ~ 최대 20명
 - 찬성 쪽에 약 19명 정도 추가 참여 예정

■ 충북

- 회장 입장
 - 개인적으로 "이원적 구성 + 혼합부" 지지

- 상고법원에는 부정적임. 주변에 찬성하는 이들이 거의 없음

● 6/6 협의회에서 별도 의견 안내고 전체 의사에 따르겠음

- 독자적인 반대 성명을 낼 의사는 없음

- 전체가 반대 성명을 한다면 빠질 수는 없음

■ 대구

● 6/5까지 설문조사 진행

● 6/9 변협회장 대구 방문 시 의견 전달 예정

■ 광주

● 400명 회원 중 작년 1차 설문조사에 50명 참여, 41명(82%) 반대

● 2차 설문조사 진행

- 1차 합산 결과 반대 59명, 찬성 23명 → 변협회장에게 결과 보고함

● 독자 반대성명은 안하기로 결정

● 6/6 협의회에서 다른 지방회 다수가 반대성명 참여하면 참여할 예정

- 의견이 나뉘면 참여하지 않기로 광주법원과 논의함

■ 전북

● 작년 설문조사 결과, 20명 참여하여 참여율 낮으나 찬성이 우세

● 회장 개인 의견은 반대는 아니고, 우호적인 입장임

● 6/6 협의회 반대성명에 참여하지 않도록 협조 당부

■ 제주

● 찬성 입장이나, 6/6 협의회 불참 예정

2. 언론 상황

가. 방송

1) TV

■ tvN 고○○의 빨간 의자 (수요일 19:40~)

- 이○○ 양형위원회 위원장 출연 (6월 하순 예상)

2) 라디오

▣ “KBS1 라디오 중심 목○○입니다” (매일 12:20~13:56)

- **열린마당 코너 : 화, 목 13:15~13:56**

- 화요일 ‘열린마당’ 순서

- 찬성 입장 / 반대 입장
- 청취자 전화참여 1~4 / 문자 소개

- 목요일 ‘열린마당’ 순서

- 시민 컷
- 찬성 입장 / 반대 입장
- 청취자 전화참여 1~4 / 문자 소개

- **코너의 특성**

- 찬성 1명, 반대 1명 출연, 사회자의 질문 6~8개
- 상호 토론 없음
 - 찬성 토론자에 대해 질의응답 종료 후 반대 토론자에 대해 질의응답 진행
 - 찬성 토론자가 먼저 출연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대 토론자의 견해까지 예상하여 반박할 필요 있음

- **시기**

- 고려요소
 - 국회 회기 6/8~7/7
 - 총리 인사청문회 6/8~6/10
- 1안 : 6/16
- 2안 : 6/18
- 3안 : 6/11 - 인사청문회 직후여서 쟁점이 흐려질 듯
- 불가 : 6/9 - 인사청문회 기간임

- **출연진**

- 1안(변호사)

- 이○○(찬) : 민○○(반)

- 2안(교수)

- 이○○(찬) : 이○○(반)

- 유○○(찬) : 장○○(반)

- 정○○(찬) : 장○○(반)

- ▣ **“TBS 열린 아침 고○○입니다” (월~금 오전 7시~9시)**

- **열린 인터뷰 1, 2 코너 (전화 인터뷰)**

- **시기**

- 1안 : 6/23 (정책토론회 직후 쟁점 상 연결 가능)

- 2안 : 6/26 (법사위 논의 중간)

- **출연진**

- 서울변회 회장 or 서울변회 사무총장

- 백○○ 변호사 or 김○○ 변호사

나. 신문 등

1) 동아

- ▣ **주제 : 상고법원안의 대안 논의**

- ▣ **시기**

- 1안 : 6/15경

- 2안 : 6/22경

- **고려사항**

- 6월 2주 : 개원 및 인사청문회

- 법사위 일정상 제1소위와 근접한 시기

2) 매경

■ 주제 : 상고법원안의 경제적 효과 (정책연구용역)

■ 시기 : 6/18~6/19경

- 정책토론회의 시기가 6/22로 될 것을 전제
- 현실적으로 중간보고서 수정안 제출 시점을 고려함

3) 법률신문

■ 주제 : 상고법원안의 대안시리즈 2회 게재

■ 시기

- 1안 : 6월 3주 (6/15, 6/18)
 - 법사위 제1소위 논의 직전
- 2안 : 6월 4주 (6/22, 6/25)
 - 법사위 제1소위 논의 중
 - 정책토론회 관련 보도와 충돌 가능성 있음
- 고려사항 : 법사위 일정 및 정책토론회 일정

4) 연합

■ 제1주제 : 정책토론회 관련 심층 보도

- 시기 : 6/22
- 고려사항 : 정책토론회 개최일

■ 제2주제 : 입법 촉구 시론

- 시기 : 6/25
- 고려사항 : 정책토론회 개최 후 제1소위 논의 직전 논의 촉구

5) 국민

■ 주제 : 대법원의 역할 및 위헌론 (공법학회 연구용역)

■ 시기 : 6/24 ~ 6/29

6) 중앙

- 주제 : 법원행정처장 취임 500일 인터뷰 등
- 시기 : 6/29 ~ 7/3

7) 한겨레, 경향

- 주제 : 대법관증원론의 허와 실(가칭)
- 시기 : 6/17 or 6/23

3. 국책연구기관 중심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가. 시기 : 6/22

나. 주최 : 홍일표 의원, 사법정책연구원 (공동)

다. 목표

- 공청회 이후 이론적 . 학술적 논의를 심화 . 발전시키는 토론의 장을 마련

라. 참석자

- 좌장 : 김○○ 교수
- 주제 발표
 - 사법정책연구원 강○○ 연구위원 / 서울대 허○○ 교수
- 토론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KDI) / 동의대 차○○ 교수

4. 로드맵 ⇨ 별첨

6월 국회 기간 로드맵

일	월	화	수	목	금	토
6/7	8 국회 개회 인사청문회	9 대전·대구변회 방문 인사청문회	10 인사청문회	11	12 경기중앙변회 방문	13
14	15 동아(1안) 법률 1차(1안)	16 KBS1 라디오(1안)	17 한겨레, 경향(1안)	18 매경 법률 2차(1안)	19 제주변회 방문 지방변회 성명 종기	20
21	22 정책토론회 연합 1차	23 TBS 라디오(1안)	24 tvN 빨간의자 (예상1) 국민	25 연합 2차	26	27
28	29 중앙	30	1	2	3	4
5	6	7 국회 폐회	8	9	10	11

6월 홍보 전략

2015. 6. 7.

사법정책실

1. 언론 상황

가. 방송

1) TV

■ **MBC 뉴스플러스 (저녁 8시 뉴스, 약 3분 30초)**

- 상고법원 관련 찬반 논란 : 6/8 ~ 6/10 (예상)

■ **tvN 고○○의 빨간 의자 (수요일 19:40~)**

- 이○○ 양형위원회 위원장 출연 (6월 하순 예상)

2) 라디오

■ **“KBS1 라디오 중심 목○○입니다” (매일 12:20~13:56)**

- **열린마당 코너 : 화, 목 13:15~13:56**

- 화요일 '열린마당' 순서

- 찬성 입장 / 반대 입장
- 청취자 전화참여 1~4 / 문자 소개

- 목요일 '열린마당' 순서

- 시민 컷
- 찬성 입장 / 반대 입장
- 청취자 전화참여 1~4 / 문자 소개

- **코너의 특성**

- 찬성 1명, 반대 1명 출연, 사회자의 질문 6~8개
- 상호 토론 없음
 - 찬성 토론자에 대해 질의응답 종료 후 반대 토론자에 대해 질의응답 진행

- 찬성 토론자가 먼저 출연하므로, 반대 견해까지 예상하여 반박할 필요 있음

● 시기

- 고려요소 : 국회 회기(6/8~7/7) + 인사청문회(6/8~6/10)

- 1안 : 6/16

- 2안 : 6/18

● 출연진

- 1안 : 이○○ 변호사(찬) - 장○○ 교수(반)

- 반대 측은 되도록 대법관증원론도 반대하는 '사실심 강화론자'로 구성

- 기타

- 찬성 : 이○○, 유○○, 정○○

- 반대 : 이○○, 민○○

■ “TBS 열린 아침 고○○입니다” (월~금 오전 7시~9시)

● 열린 인터뷰 1, 2 코너 (전화 인터뷰)

● 시기

- 1안 : 6/23 (정책토론회 직후 쟁점과 연결 가능)

- 2안 : 6/26 (법사위 논의 중간)

● 출연진

- 1안 : 서울변회 회장 or 서울변회 사무총장

- 해당 프로그램 역대 출연진은 주로 기관장, 국회의원, 소관 단체의 책임자

- 2안 : 백○○ 변호사 or 김○○ 변호사

- 종편 및 각종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는 패널 (상고법원 우호적)

- 역대 출연진의 컨셉에 배치된다는 단점

나. 신문 등

1) 조선

■ 주제 : 지상좌담회 + 사내 칼럼 (+ 설문조사)

■ 시기

● 지상좌담회 : 6/15 ~ 6/16

● 사내 칼럼 : 6/22 ~ 6/23

2) 동아

■ 주제

● 상고법원안의 대안, 효과

● 상고법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심층 분석

- 변호사단체

■ 대한변협 설문조사 결과, 서울변회 설문조사 결과

- 일반 국민

■ 동아일보 설문조사 결과, 디지털 썰전 설문조사 결과

- 전문가 집단 or 일반 국민 모두 약 60% 찬성 입장

■ 시기 : 6/22 ~ 6/23

3) 중앙

■ 주제 : 상고법원 도입 전후 비교 사례 ⇨ 부정적일 경우, 한경 or 서경 보도

● A씨의 상고사건의 처리 프로세스

- 상고사건 분류 기준의 적용 + 후속 절차 시뮬레이션

■ 시기 : 6/17 ~ 6/19

4) 매경

■ 주제 : 상고법원의 경제적 효과 (정책연구용역)

■ 시기 : 6/18 ~ 6/19

5) 법률신문

■ 주제 : 상고법원안의 대안시리즈 2회 게재

■ 시기

● 1안 : 6/11 + 6/15

● 2안 : 6/15 + 6/18

6) 연합

■ 제1주제 : 정책토론회 관련 심층 보도

● 시기 : 6/22 (전체 보도자료 배포, 엠바고 오후 3시 요청) → 정책토론회 당일

■ 제2주제 : 입법 촉구 시론

● 시기 : 6/24 (유동적) → 제1소위 논의 직전

7) 국민

■ 주제 : 상고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 시기 : 6/17 ~ 6/19

8) 한겨레, 경향

■ 주제 : 대법관증원론의 허와 실(가칭)

● 기고문은 완성된 상태

● 기고자는 "외부인(변호사)", 연수원 28~29기 이하 적절

■ 시기 : 6/11경 or 6/15경

9) 기타

■ 대법원의 역할 및 상고법원 관련 헌법상 쟁점(공법학회 연구용역)

● 법률신문 연구논단 등 활용 (일간지는 다소 부적절)

2. 언론사별 분류 및 로드맵 ⇨ 각 별첨

	아이템	보도시기	접촉시기
조선	① 지상좌담회	6/15 ~ 6/16	6/8
	② 사내칼럼	6/22 ~ 6/23	6/12
동아	대안, 효과, 설문조사 분석	6/22 ~ 6/23	6/8 (+6/19)
중앙	상고법원 도입 전후 비교 사례	6/17 ~ 6/19	6/8 (+6/16)
매경	경제적 효과 (연구용역)	6/17 ~ 6/19	6/11
법률신문	대안 시리즈	6/11 + 6/15	6/8
연합	① 정책토론회 심층 분석	6/22	6/15
	② 입법 촉구 시론	6/24	6/15
국민	처리 지연 피해	6/17 ~ 6/19	6/10
한겨레, 경향	기고문	6/11 or 6/15	기고자 확정 시
MBC 뉴스플러스	찬반 의견	6/8 ~ 6/10	불필요(완료)
tvN 빨간의자	이○○ 출연	6월말 이후	불필요(완료)
KBS1 라디오 목○○	찬반 의견	6/16	6/8
TBS 라디오 고○○	서울변회 찬성 이유 정책토론회 결과	6/23	6/15

■ 미정 : 한국, 한경, 서경

6월 국회 기간 로드맵

일	월	화	수	목	금	토
6/7	8 개회 + 인사청문회 MBC	9 인사청문회	10 인사청문회	11 법률 1차 한겨레, 경향	12	13
14	15 조선(지상좌담회) 법률 2차	16 KBS1 라디오	17 중앙	18 매경	19 국민	20
21	22 정책토론회 조선(사내칼럼) 동아, 연합 1차	23 TBS 라디오	24 연합 2차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폐회	8	9	10	11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 및 국회 통과 전략

2015. 6.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6월 임시국회에서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개시

- 6. 17. 법사위 1소위에서 안건으로 첫 심사 ⇨ 법률안 견제·반대 세력과의 진검 승부 돌입
- 최근 법사위원장의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 표명 ⇨ 여러 유리한 입법 환경을 기세삼아 6월 임시국회 법률안 통과를 당면한 사법부 최대 목표로 유지하면서, 총력 돌파를 위한 전방위 입법추진 태세 구축 필요
- 6월 임시국회 법안심사 일정, 법사위 구성 변화 등 전망 ⇨ 실효적인 단기 입법추진전략 수립

▣ 그러나 법사위 1소위원장(여당 간사) 교체 등 부정적 변수도 상존 ⇨ 6월 임시국회 통과 불발에 대비한 하반기 정기국회 입법추진전략 필요

-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는 입법 환경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 ⇨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전략 수립
- 특히, 법률안 심사·통과권을 쥐고 있는 법사위원들의 성향, 상고법원안에 대한 인식 등 냉철하게 점검·분석 ⇨ 적극적·효과적인 접촉·설득 지속
- 무엇보다도, 사실상 입법 성사의 9부 능선에 해당하는 법사위 1소위에서의 논의 지지부진할 경우, 그에 대한 극복 방안 필요 ⇨ 국면 전환할 수 있는 타개책 모색



2. 6월 임시국회 진행 경과

▣ 6월 임시국회 일정

☑ 주요 일정

- ▶ [대정부질문] 6. 19. / 6. 22.~6. 24.
- ▶ [법사위 제1소위] 6. 17. 10:00 / **6. 26. 10:00** / **7. 6. 10:00**
- ▶ [법사위 전체회의] **6. 26. 14:00(법안 심사)** / 7. 2. 17:00(결산 심사)
- ▶ [본회의] 6. 25. 14:00 / 7. 1. 14:00

▣ 법사위 1소위에서의 상고법원 법률안 심사 경과

● 6. 17.(수) 17:55 ~ 18:15(20분간) 심사

- [참석] 이한성 1소위원장, 김도읍, 전해철, 임내현, 서영교, 서기호 의원

● 주요 내용

- 전문위원 법률안 심사 보고

- [보고 요지] ①상고법원 판사 임명절차, 특별상고로 인한 4심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②하급심 강화 및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전제되어야 함, ③ 상고사건 증가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 소관 부처 의견 제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 [법무부 차관 발언 요지] ①상고사건 증가로 인한 대법원 업무과중 및 재판 지연에 대해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검토되어 왔음, ②국민 여론 수렴과 종합적인 검토 필요

- 의원 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하여 **토론 없이 산회 선포됨**

▣ 법사위 여당 간사 겸 1소위원장 교체

● 법률안 대표발의한 홍일표 의원에서 이한성 의원으로 교체

● [이한성 의원] (중략)

☑ 이한성 의원 자질론 제기 사례



(생략)

3. 6월 임시국회 입법추진전략

가. [기본 방향] ⇨ **우호적 입법추진환경 활용한 화력 집중**

▣ [국회] 법사위 최고책임자인 **법사위원장의 협조 의사 확인된 상황**
⇨ **영향력 극대화 방안 모색**

● [현황] 법사위원장의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한 적극 찬성 및 강력한 통과 의지 표명 ⇨ 입법 성사에 매우 고무적인 교두보 확보

- 6. 15. 기초실장과의 면담에서 확고한 지지 의사 표출

☑ **법사위원장의 주요 발언 요지**

- ▶ 2007년 본인이 법사위 1소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고법 상고부에 대하여 반대한 바 있음 ⇨ 그 후 10년 가까이 되가는 동안 상고제도 개선 논의 표류하고 있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
- ▶ 대법관 증원론은 대법원에서 반대하는 이상 **사실상 추진 불가능하고, 소수 증원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음**
- ▶ 상고법원 설치가 최선은 아니지만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함
- ▶ 이한성 1소위원장에게도 법률안 통과 필요성 전달하고, 만약 1소위 통과가 쉽지 않으면 전체회의에 회부하여 논의하는 방법도 권유하겠음

- 나아가, 1소위 의원 중 반대 입장 의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득 방법 및 접촉 루트 등에 관하여도 조언함

- (김진태, 김도읍, 이한성 의원) 공천권을 가진 유승민 원내대표를 통한 접촉 권유
- (전해철 의원) 비슷한 성향의 이종걸, 문병호 의원은 설득 완료되었고, 민변 수뇌부 설득도 가능하므로, 야당 원내부대표 회의에서 공감대 형성하여 대세론으로 밀어붙이는 방법 주효할 것
- (서기호 의원) 계속 근거 박약한 논리로 반대할 경우, 철저한 무시 및 고립



화 전략 추진

- [대응전략①] 법사위원장에게 6. 17. 1소위에서 드러난 문제점, 부정적 기류 등 적나라하게 전달하고, 1소위 통과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사격 주문
 - [대응전략②] 법사위원장의 최대 관심 법안인 특허소송 관할 집중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지지 행보 ⇨ 6월 국회에서 상고법원안과 함께 통과시켜야 할 패키지 법률안으로 설득
 - ▣ [BH·법무부] 메르스 확산, 후임 법무부장관 인선에 따른 조직 정비 등으로 상고법원 법률안에 신경 쓸 여력 없는 상황 ⇨ 親검찰 성향 의원(김진태, 김도읍, 이한성 의원)들에 대한 절호의 설득 기회
 - [현황①] BH는 조기에 메르스 사태 진정시키기 위한 총력 투입 중 ⇨ 자칫 6월 내 확산 불길을 잠재우지 못할 경우, 1년 전 세월호 참사와 함께 국가적 재난위기에 대한 총체적 대응능력 부재라는 극복 불능의 비난에 휩싸여 조기 레임덕 상황에 봉착할 것
 - [현황②]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장관 지명에 따른 후속 인사 등 새로운 조직 구축에 촉각이 집중된 상황
- 6. 21.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김○○ 서울고검장 내정
- 김○○ 법무부장관 내정자 프로필

 - ▶ 전남 고흥 출신
 - ▶ 광주일고, 서울 법대, 사법연수원 16기
 - ▶ 부산고검장, 법무부 차관, 서울고검장 등 역임
- 박근혜 정부 출범 후, 5번째 호남 출신 장관 지명 ⇨ 무난한 인사청문회 예상
 - 김○○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2기수 아래의 기수 역전 인사 단행 ⇨ 검찰총장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 등 고려
- 법무부장관 임명 완료 후, 검찰총장의 용퇴 여부 및 후속 검찰인사에 이목 집중되는 상황



- [강한 고리 대응전략, 김진태 의원] 상고법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희석시키도록 다각도의 접촉 ⇨ 적극 반대의사 표시하지 않도록 설득

☑ 김진태 의원에 대한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의 인물평

- ▶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에게 김진태 의원 설득 부탁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반응함
 -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소신과 주관이 뚜렷하고,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동지 의식이 매우 강함
 - BH나 親朴系 중진·유력인사의 부탁이 있지 않는 한, 상고법원 법률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임

- [약한 고리 대응전략, 김도읍·이한성 의원] 정서적 접근을 통해 약한 고리를 더욱 느슨하게 만들거나 단절시키는 방안 추진 ⇨ 법무부 반대논리 프레임으로부터의 탈출 유인

-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통한 접촉 등 시도

▣ [언론] 우호적 여론 분위기 조성된 상황 ⇨ 입법 성사 공감대 확산

- 조선일보 1면 기획기사, 동아일보의 국민 설문조사결과, 매경의 경제적 효과 기사 등 적극 인용하여 각인시킴 ⇨ 의원들에게 법률안 통과 필요성을 주문하는 압력 수단으로 활용

▣ [지방변회] 국민을 대리하는 변호사단체를 지지 세력으로 확보한 상황

- 서울·대구·인천변회의 찬성 성명결과 국회에 널리 홍보

- 6. 22.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리는 방안 등

- 대한변협의 반대 입장은 다수의 소속 변호사들 의견이 아닌, 만인투쟁을 통해 선명성 부각시키고자 하는 협회장 등 집행부의 독단적 견해로 평가절하 ⇨ 향후 법률안 심사에서 대한변협뿐만 아니라, 서울변회 등 지방변회의 입장이 함께 언급될 수 있도록 추진



나. 각론적 전략

■ ① 법사위 1소위 앞 순위 안전 상징 추진

- 6. 26. 개의 예정된 1소위에서 실질적 논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 순위 안전으로 상징 추진 ⇨ 1소위 안전 상징 권한 가진 여야 간사 접촉 要
- 6. 26. 1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논의 무르익어야, 설령 곧 바로 1소위 가결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대 진영의 논리와 허점 파악하여 향후 1소위를 대비한 면밀한 대응전략 수립 가능

■ ② 이한성 신임 여당 간사 겸 1소위원장 집중 접촉·설득

- 야당 간사 반대 구도 아래에서, 여당 간사 겸 1소위원장의 역할은 상고법원안 통과에 결정적 영향 미칠 것
- 상고법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의 주도권 행사 강력 촉구
 - 야당 전해철 간사에게 좌지우지되고 있는 구도에서 벗어나 1소위원장으로 필요한 영향력 발휘하도록 요청
 - 대법관 증원론 VS 상고법원 설치 프레임에서 탈피하여, 상고법원 도입을 전제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는 방식의 1소위 진행 건의
- 인적 네트워크 활용한 정서적 접근 시도
 - 법무부 반대 논리 등으로부터의 탈출 및 유연한 스탠스 취하도록 설득
 - 법사위 여당 의원을 대표하는 간사에게 요구되는 추진력과 책임감 자극
 - 전임자 홍일표 의원을 통해, 후임 간사로서 사법부 최대 현안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지지 주문

■ ③ 상고법원 공청회 발언 등을 기초로 그 외 반대 입장의 1소위 의원별 맞춤형 접촉·설득 지속



	의원	성향, 접촉·설득 방안 등	접촉 루트
여당	김진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신·정치색 뚜렷 - 가장 강한 반대 입장 ⇨ BH·법무부 설득노력과 병행 (BH나 親朴系 중진·인사를 통한 접촉 긴요) - 공안전담재판부 설치 등 전향적 검토 입장 표명 - 반대의견 고양되지 않도록 설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내; 홍일표, 유승민, 김무성 -중진; 이병석, 정갑윤 -친분; 양형실장, 홍○○, 이○○, 김○○ -사적; 민○○, 정○○
	김도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당 원내부대표로서, 원내대표단 지시에 잘 따르는 스타일 - 상고허가제 주장 ⇨ 상고법원이 한국형 상고허가제로서 현실적 개선책이라고 설득 - 찬성 또는 묵인 입장으로 변경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료; 권성동 -당내; 유승민, 홍일표 -중진; 이병석, 정갑윤
야당	전해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지대한 관심 ⇨ 원론적 차원에서 다양화 노력 약속, 법원이 곧바로 실현할 수 없는 과제로서, 정권 창출에 의해 달성해야 한다는 점 강조 - 대법관 증원 주장 ⇨ 現 보수정권하에서 진보인사 진입 사실상 불가능 - 법사위 간사로서 법원에 대한 부채의식 활용 (정재청구 불변금지폐지 형소법 개정안 반대, 대법관 임명동의절차 지연 등) - 최소한 적극 반대의사 표시하지 않도록 설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내; 문재인, 박범계 -사적; 노○○, 유○○ -예우; 처장님 만찬 등
	서기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당정책연대를 통한 목포 지역구 출마 행보 중 - 위헌론, 대법관 증원론 등 제기 ⇨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의 합리적 판단 부탁 - 사실심 충실화 노력 부족 주장 ⇨ 제도개선 경과 및 향후 기대 효과 등 명확히 설명 - 반대 입장 고수 시, 고립화 전략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내; 전해철 -친분; 지원실장, 이○○

▣ 41소위에서 상고법관 추천위원회 등 대안 적극 제시

- 대법원장님의 최종심 법관에 대한 인사권 강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 큼 (여야 의원 불문) ⇨ 외부에 개방된 상고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방안 등 제시하여, 진정성 있는 자세와 노력 보여줄 필요 있음
- 입법부, 행정부 인사의 적극 개입 및 법원 관여 최소화 방안, 추천위원회 의결에 지속력 부여 방안 등 검토 후 제시
- 지금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 입안하든지, 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상고법원 법률안 통과 후 재검토 및 협상 여지 남아있음 ⇨ 일단 전략적으로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설득 방안 제시가 관건

4. 하반기 정기국회 입법추진전략

가. 하반기 전략 수립 필요성 ⇨ 6월 임시국회에서 1소위 통과 난망

▣ 법사위 1소위원장 교체에 따른 부정적 파급력 현실화

- 1소위원장으로 첫 회의 주재한 6. 17. 1소위에서, 우려했던대로 소극적·수세적·비효율적 회의 진행으로 일관
 - 여야 의원간 의견 대립 상황에서의 중재 능력 결여
 - 충분히 가결이 가능한 법률안에 대해서까지 불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 속행
 - 예컨대, 특허소송 관할 집중 법률안에 대하여, 뜬금없이 대한변협 의견 청취를 이유로 계속 심사 결정
 - 92건의 상정 법률안 중 42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단 1건의 법률안도 가결되지 않음 ⇨ 소관 부처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입법조사관·의원 보좌진들의 불만과 향후 1소위에 대한 우려가 상당함
-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한 소극적 반대 의사 견지
 - 법사위원장 및 기조실장 등의 협조 부탁에 대하여,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어 찬성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
 -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 상고법원안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이해가 모두 부족한 상태로 보임
- ⇨ 법률안 통과에 지대한 영향력 가진 1소위원장의 역량 부족 및 우군화 작업 미진한 상태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 성사에는 한계 존재

▣ 1소위 내 반대 분위기 여전



- 검찰 출신 김진태, 김도읍, 이한성 의원은 견제·반대 입장 고수 중
⇒ 6월 임시국회에서 설득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전략 필요
- 야당의 전해철, 서기호 의원도 반대 수위와 강도를 유지하고 있음

☑ 전해철 의원 최근 행보 등

- ▶ 사실심 충실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라는 조건을 던져 놓고, 법원의 가시적 결과물을 요구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있음
- ▶ 야당 간사로서의 지위 이용하여, 갈수록 1소위 내 입지를 키워 가고 있음
- ▶ 1소위 일정이나 안건 결정에 있어서 밀어붙이기식 협상으로 의사를 관철시키고 있고, 향후 이한성 간사와의 파트너십 관계에서 더욱 그러한 현상 공고해질 것으로 예측

☑ 서기호 의원 최근 행보 등

- ▶ 법원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으로 점철되어,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 입장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음
- ▶ 대법관 증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에서의 사실심리제한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민감한 법률안 지속적으로 발의하여, 법원과의 대립각을 첨예화시키고 있음
- ▶ 최근 전해철 의원과 밀월관계에 빠져, 전 의원으로부터 의정 활동에 대한 코치를 받으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는 소문

▣ 1소위 일정 불투명 및 변수 발생

- 6. 26. 예정된 1소위는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7. 6로 예정된 1소위는 조만간 법사위에서 열릴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과의 중복 등으로 실제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유력함
- 반면, 6. 17. 1소위에 안건으로는 상정되었으나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약 50개의 법률안이 6. 26. 1소위 안건 재상정을 기다리고 있음 ⇒ 6. 26. 약 2시간의 1소위 논의에서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한 충실한 논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등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6. 17. 1소위에 전격적으로 상정되어, 실질적 논의까지 이루어짐 ⇒ 6. 26. 1소위에서 적극 방어를 위해 상당한 역량 투입이 요청됨



-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의도한 위 개정안에 대하여 법원과 여당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전해철, 서기호 의원의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한 반대 수위도 동반하여 격앙될 것으로 예측됨

나. 입법추진전략

▣ [기본 방향] ⇨ 1소위를 대체하는 법안심사특위를 구성하여 전격 통과 시도

● 난공불락의 1소위를 극복하는 최후 타개책으로 모색

☑ 법안심사특위 구성 사례

▶ 17대 국회에서, 사개추위가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내에 법안심사 4인 특위 구성

▶ [구성 배경]

- 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재정신청 전면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 공판중심주의 심리절차 확립 등), 2006. 1. 6. 발의
- 이후 법안심사1소위를 수차례 열었으나, 의원들의 이해 부족, 입장 차이 등으로 2006년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논의 지지부진
- 2007. 2.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문병호 의원, 한나라당 주성영, 이주영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4인 특위 구성

▶ [4인 특위 운영 성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집중 심사 ⇨ 원안에 이의 없는 내용, 수정 합의 내용, 4인 특위에서도 합의되지 않아 1소위로 회부할 내용 구분
- 4인 특위에서 1차 정리된 내용을 1소위에서 확인하고 추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 2007. 4.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하여, 2008. 1. 1.부터 시행

● 특위 구성의 법률적 근거

☑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②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 [특위 구성 시기] ⇨ 하반기 정기국회 국정감사 직후

- 6월 임시국회 종료 후 가장 중요한 국회 이벤트는 국정감사 ⇨ 그 이전에 특위 구성 시도는 모멘텀 확보 쉽지 않을 것

☑ 올해 국정감사 일정 관련

- ▶ 대법원 국정감사는 통상 10월 초중순경 실시되어 왔고, 작년과 같이 분리국감을 주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되지 않고 있음
- ▶ 다만,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하여, 특히 여당 원내지도부에서 예년보다 15일~1달 정도 앞당겨 실시하기를 희망한다는 예측 나오고 있음 ⇨ 이 경우 9월 말 추석 연휴(9. 26.~9. 29.) 이전에 실시할 가능성 有

- 다만, 6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부터 특위 구성 필요성 및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한 사전 설득 작업 착수 필요
 - 6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통과할 고유법 개정안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 ⇨ 문제의 심각성이 도드라져 있을 때, 이를 동력 삼아 물밑 작업 개시하는 것이 효과적
- 국정감사 직후 법률안 심사 일정 면밀히 점검
 - 예산심사,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따라, 법률안 심사가 아예 뒷전으로 밀릴 수 있음 ⇨ 이럴 경우, 올해 내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정감사 직후 신속하게 특위가 구성되어야 함
 - 국정감사 직후 1소위 일정 등이 신속하게 잡힐 경우, 1~2 차례 1소위 진행 경과를 살펴 본 후, 1소위에서의 진전 없는 상황을 공략포인트로 삼아 특위 구성의 공감대 형성 시도

▣ 특위 구성 방법

- 법사위원장에게 특위 구성 설득
 - 4월 임시국회부터 법률안 처리 실적 매우 저조한 상황 설명 ⇨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 자극
 - 특히 이한성 1소위원장이 법률안 심사 주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임을 강조 ⇨ 상고법원 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을 올해 꼭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위 구성 불가피한 사정 부각

- 17대 국회 당시의 4인 특위 성공 사례 제시 ⇨ 법사위원장 본인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어, 특위 구성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할 것

● 17대 국회 때와 유사한 형태의 4인 특위로 구성

- 여야 각 2인씩 참여하는 방안 제시
- 가급적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에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중진급 의원이 바람직
 - 17대 국회 4인 특위 때도, 여야 간사(주성영, 이상민 의원) 및 1소위원장(문병호 의원)이 특위에 참여함
- 상고법원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법원에 우호적인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 필요
 - 예컨대, 여당의 홍일표, 김도읍, 이병석 의원, 야당의 박지원, 우윤근, 이춘석 의원 등

▣ 특위를 활용한 상고법원 법률안 통과 성사

- 상고법원 법률안, 그 외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민생 법안을 중점 처리 법률안으로 특위에 상정
- 1주일에 1~2회 가량 집중 심사를 거쳐, 원안 통과 의견 또는 대안 등 수정 가결 의견 도출
- 특위를 1소위 대체형이 아닌 보완형 소위원회로 운영할 경우, 1소위에서는 특위 심사결과를 형식적으로 추인하거나, 가결을 전제로 세부 사항을 보완하는 형태로 심사 진행
- 특위 또는 1소위 가결 후, 올해 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 추진 [끝].

상고법원 하반기 입법 추진 방안

1. 상고법원 법률안 심사 진행 상황

▣ [형식적·시기적] 법사위 1소위 회부 이후 법률안 심사 거의 진전 없는 상태

● 상고법원 법률안 발의 및 심사 경과

- ▶ 2014/12/19 법률안 발의
- ▶ 2015/4/20 법사위 전체회의 공청회 실시
- ▶ 2015/4/29 1소위 회부
- ▶ 2015/6/17 1소위 심사 ⇨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법무부·법원행정처 의견 청취 후 종료
- ▶ 2015/7/17 1소위 안건 상정되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논의 개시 불발
- ▶ 2015/7/20 1소위에서 첫 실질적 심사 ⇨ But, 법률안 내용과 다소 동떨어진 하급심 충실화 조건, 법률안 발의 형식 지적 등 피상적 논의만 이루어짐

● 1소위 회부 후 약 3달이 경과하였음에도 논의 경과 매우 지지부진

▣ [실질적·내용적]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

- 상고법원안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할 중요 법률안임에도, 안건 상정 여부나 안건 순위에서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음
- 안건으로 논의 착수한 2차례 1소위에서도, 의례적인 법률안 심사 개시에 머물거나, 법률안 발의 배경·형식, 하급심 충실화 필요성 지적 등 법률안의 핵심에서 벗어난 공허한 발언 주고받기에 그침

2. 향후 입법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

▣ 법사위 1소위 위원장 교체에 따른 부정적 파급력 현실화

- 이한성 의원의 (중략)

- 충분히 가결이 가능한 법률안에 대해서까지 불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 속행
 - 예컨대, 특허소송 관할 집중 법률안에 대하여, 뜬금없이 대한변협 의견 청취를 이유로 계속 심사 결정
- 위원장으로 첫 회의 주재한 6. 17. 1소위에서 92건의 상정 법률안 중 42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단 1건의 법률안도 가결되지 않음, 그 이후 현재까지 열린 3차례 1소위에서 가결된 법률안 10여건에 불과 ⇨ 소관 부처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 입법조사관 · 의원 보좌진들의 불만과 향후 1소위에 대한 우려가 상당함
-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한 소극적 반대 의사 견지
 -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어 찬성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 고수 ⇨ 적극적 논의 의지不在
 -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 상고법원안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이해가 모두 부족한 상태로 보임

■ 1소위 내 반대 분위기 극명

- 법무부 · 검찰의 종속 변수인 김진태, 김도읍, 이한성 의원은 견제 · 반대 프레임에 갇혀 있음
- 야당의 전해철, 서기호 의원도 반대 수위와 강도를 유지하고 있음
 - [전해철] 사실심 충실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조건을 제시하고, 법원의 가시적 결과물 요구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
 - [서기호] 법원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으로 점철되어,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 입장 노골적으로 표명

3. 하반기 정기국회 입법 추진을 위한 타개책

가. 타개책 모색 필요성

- 현 상황에서는, 하반기 정기국회 국정감사 후에도 효율적 1소위 진

행 기대 불가능 ⇨ 특위 구성 VS 전체회의 부의 등 대안 필요

- 통상적으로, 총선 직전 연도의 정기국회에서는 선거 준비 등 정치 현안에 밀려 충분한 1소위 논의 기회 확보 쉽지 않음

나. 구체적 방안

- ①국회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법안심사 특위 구성

- 1소위를 대체하는 특위 구성 ⇨ 특위에서의 밀도 있는 집중 심사 통해 법률안 통과

☑ 법안심사특위 구성 사례

▶ 17대 국회에서, 사개추위가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내에 법안심사 4인 특위 구성

▶ [구성 배경]

- 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재정신청 전면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 공판중심주의 심리절차 확립 등), 2006. 1. 6. 발의
- 이후 법안심사1소위를 수차례 열었으나, 의원들의 이해 부족, 입장 차이 등으로 2006년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논의 지지부진
- 2007. 2.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문병호 의원, 한나라당 주성영, 이주영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4인 특위 구성

▶ [4인 특위 운영 성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집중 심사 ⇨ 원안에 이의 없는 내용, 수정 합의 내용, 4인 특위에서도 합의되지 않아 1소위로 회부할 내용 구분
- 4인 특위에서 1차 정리된 내용을 1소위에서 확인하고 추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 2007. 4.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하여, 2008. 1. 1.부터 시행

- [구성 시기] 올해 중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정감사 직후 신속한 구성 필요
- [구성 방법] ①여야 각 2인, ②영향력 있는 중진급 의원 중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 높고 긍정적 견해 가진 의원으로 구성
 - 여당 홍일표, 이병석, 김도읍 의원 + 야당 우윤근, 이춘석 의원
 - 여야 간사는 배제

■ ② 전체회의의 부의

- 1소위 계류 중인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부의하여 심사 후 의결하는 방안
- [제1안] 1소위 의결로 전체회의 회부 가능 ⇨ But, 1소위 위원장 등 의원들 반대 시 불가능
- [제2안] 심사기관 도과 후 전체회의의 부의 (국회법 제71조, 제85조)
 -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 시, 1소위 회부 안전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 가능 (국회법 제85조 제1항 3호) ⇨ 1소위에서 그 기간 내에 심사 마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은 중간보고 듣고 전체회의의 부의 가능(국회법 제85조 제2항)
 - But, 여야 간사 반대 시 불가능
- [제3안]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전체회의의 부의 (국회법 제71조, 제77조)
 - 위원회에서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고 (국회법 제71조 제2문), 위원장은 의사일정 변경 시에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음(국회법 제77조)

☑ 의사일정 변경 전례

- ▶ 2005. 6. 29. 제17대 254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노회찬 의원 외 1인 찬성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상정 ⇨ 2소위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
- ▶ [표결 결과] 찬성 7인, 반대 2인으로 당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였으나, 결론 못 내리고 계속 심사

- [검토] ⇨ 제3안이 현실적 타개책으로 적합
 - 1소위 의결 요하거나 심사기간 지정하는 제1, 2안은 여야 간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추진 불가능
 - 현재 법사위원들 중 과반수가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해 찬성 내지 조건부 찬성 입장 ⇨ 의사일정 변경동의 안전 상정하여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는 것이 1소위 논의 지연되고 있는 특단의 상황에서 올해 안에 중요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임

■ 특위 구성 방안과 전체회의의 부의 방안 선택적 추진 가능

● 특위 구성 방안의 장점 및 고려사항

- [장점] 특위가 1소위 역할을 대신하여 법률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법사위 내 충분한 담론을 이어갈 수 있음
- [고려 사항] 원활한 특위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여야 간사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고, 무게감 있는 특위 참여 위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성숙되어야 함

● 전체회의 부의 방안의 장점 및 고려사항

- [장점] 회의 주재권 있는 위원장의 확고한 의사, 2명의 안전 발의 의원만 충족되면, 여야 간사 등과의 사전 교감 없이도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추진할 수 있음
- [고려사항] 다만, 법사위 내부 의견 수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인다면, 전체회의 안전 상정 표결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강경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고, 법률안 심사에도 악영향 미칠 수 있음 ⇨ 우호적 법사위 원들에 대한 사전 접촉을 통해 전체회의 부의 방안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획득해야 함

- [결론] 향후 법률안 심사 일정, 논의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법사위 내부 분위기와 입법 추진 상황에 보다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고법원 하반기 입법 추진 방안

1. 상고법원 법률안 심사 진행 상황

▣ [형식적·시기적] 법사위 1소위 회부 이후 법률안 심사 거의 진전 없는 상태

● 상고법원 법률안 발의 및 심사 경과

- ▶ 2014/12/19 법률안 발의
- ▶ 2015/4/20 법사위 전체회의 공청회 실시
- ▶ 2015/4/29 1소위 회부
- ▶ 2015/6/17 1소위 심사 ⇨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법무부·법원행정처 의견 청취 후 종료
- ▶ 2015/7/17 1소위 안건 상정되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논의 개시 불발
- ▶ 2015/7/20 1소위에서 첫 실질적 심사 ⇨ But, 법률안 내용과 다소 동떨어진 하급심 충실화 조건, 법률안 발의 형식 지적 등 피상적 논의만 이루어짐

● 1소위 회부 후 약 3달이 경과하였음에도 논의 경과 매우 지지부진

▣ [실질적·내용적]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

- 상고법원안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할 중요 법률안임에도, 안건 상정 여부나 안건 순위에서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음
- 안건으로 논의 착수한 2차례 1소위에서도, 의례적인 법률안 심사 개시에 머물거나, 법률안 발의 배경·형식, 하급심 충실화 필요성 지적 등 법률안의 핵심에서 벗어난 공허한 발언 주고받기에 그침

2. 하반기 정기국회 입법 추진을 위한 타개책

가. 타개책 모색 필요성

▣ 현 상황에서는, 하반기 정기국회 국정감사 후에도 효율적 1소위 진행 기대 불가능 ⇨ **특위 구성 VS 전체회의 부의** 등 대안 필요

■ 통상적으로, **총선 직전 연도의 정기국회**에서는 선거 준비 등 정치 현안에 밀려 **충분한 1소위 논의 기회 확보 쉽지 않음**

■ **①국회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법안심사 특위 구성**

- 1소위를 대체하는 특위 구성 ⇨ 특위에서의 밀도 있는 집중 심사 통해 법률안 통과

☑ 법안심사특위 구성 사례

▶ 17대 국회에서, 사개추위가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내에 법안심사 4인 특위 구성

▶ [구성 배경]

- 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재정신청 전면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 공판중심주의 심리절차 확립 등), **2006. 1. 6. 발의**
- 이후 법안심사1소위를 수차례 열었으나, **의원들의 이해 부족, 입장 차이** 등으로 **2006년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논의 지지부진**
- **2007. 2.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문병호 의원, 한나라당 주성영, 이주영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4인 특위 구성**

▶ [4인 특위 운영 성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집중 심사** ⇨ 원안에 **이의 없는 내용, 수정 합의 내용**, 4인 특위에서도 **합의되지 않아 1소위로 회부할 내용 구분**
- 4인 특위에서 **1차 정리된 내용을 1소위에서 확인하고 추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 **2007. 4.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하여, 2008. 1. 1.부터 시행

- [구성 시기] 올해 중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정감사 직후 신속한 구성** 필요

- [구성 방법] ① **여야 각 2인**, ② **영향력 있는 중진급 의원** 중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 높고 긍정적 견해 가진 의원**으로 구성

- **여당 홍일표, 이병석, 김도읍 의원 + 야당 우윤근, 이춘석 의원**

- 여야 간사는 배제

■ **②전체회의 부의**

- 1소위 계류 중인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부의하여 심사 후 의결하는 방안

- [제1안] 1소위 의결로 전체회의 회부 가능 ⇨ But, 1소위 위원장 등 의원들 반대 시 불가능
- [제2안] 심사기관 도과 후 전체회의 부의 (국회법 제71조, 제85조)
 -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 시, 1소위 회부 안전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 가능 (국회법 제85조 제1항 3호) ⇨ 1소위에서 그 기간 내에 심사 마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은 중간보고 듣고 전체회의 부의 가능(국회법 제85조 제2항)
 - But, 여야 간사 반대 시 불가능
- [제3안]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전체회의 부의 (국회법 제71조, 제77조)
 - 위원회에서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고 (국회법 제71조 제2문), 위원장은 의사일정 변경 시에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음(국회법 제77조)

☑ 의사일정 변경 전례

- ▶ 2005. 6. 29. 제17대 254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노회찬 의원 외 1인 찬성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상정 ⇨ 2소위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
- ▶ [표결 결과] 찬성 7인, 반대 2인으로 당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였으나, 결론 못 내리고 계속 심사

- [검토] ⇨ 제3안이 현실적 타개책으로 적합
 - 1소위 의결 요하거나 심사기간 지정하는 제1, 2안은 여야 간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추진 불가능
 - 현재 법사위원들 중 과반수가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해 찬성 내지 조건부 찬성 입장 ⇨ 의사일정 변경동의 안전 상정하여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는 것이 1소위 논의 지연되고 있는 특단의 상황에서 올해 안에 중요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임

▣ 특위 구성 방안과 전체회의 부의 방안 선택적 추진 가능

- 특위 구성 방안의 장점 및 고려사항
 - [장점] 특위가 1소위 역할을 대신하여 법률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법사위 내 충분한 담론을 이어갈 수 있음

- [고려 사항] 원활한 특위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여야 간사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고, 무게감 있는 특위 참여 위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성숙되어야 함

● 전체회의 부의 방안의 장점 및 고려사항

- [장점] 회의 주재권 있는 위원장님의 확고한 의사, 2명의 안전 발의 의원만 충족되면, 여야 간사 등과의 사전 교감 없이도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추진할 수 있음

- [고려사항] 다만, 법사위 내부 의견 수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인다면, 전체회의 안전 상정 표결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강경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고, 법률안 심사에도 악영향 미칠 수 있음 ⇨ 전체회의 부의 방안에 대한 법사위원들간 사전 공감대 형성이 긴요

● [결론] 향후 법률안 심사 일정, 논의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법사위 내부 분위기와 입법 추진 상황에 보다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원화 폐지 연착륙 방안 시뮬레이션 (대외비)

2015. 8. 27.

이원화연구TF

I. 검토 배경

- 이원화 폐지 연착륙 방안에 따른 준비기(2016년, 2017년, 2018년)의 연도별 세부 이행 계획을 검토함

II. 고법판사 현황

고법판사 선발

	23기	24기	25기	26기	27기	28기	29기	합계
2011	6	6	8					20
2012		5	9	10				24
2013			4	10	10			24
2014				6	9	8		23
2015					4	13	6	23
합계	6	11	21	26	23	21	6	114

고법판사 현원

		23기	24기	25기	26기	27기	28기	29기	합계
전국 고법	2011	4	6	8					18
	2012		5	8	9				22
	2013			4	10	10			24
	2014				6	9	7		22
	2015					4	13	6	23
	합계	4	11	20	25	23	20	6	109
서울 고법	2011	2	4	6					12
	2012		4	7	9				20
	2013			4	7	8			19
	2014				6	9	6		21
	2015					4	13	4	21
	합계	2	8	17	22	21	19	4	92
※ 제외: 23기 백○○(고용휴직), 25기 이○○(법원행정처), 27기 김○○(사법연구)									



▣ 서울고법 현황

고법판사	92명
고법배석	26명(30기 13, 31기 7, 32기 6)

	민사(35개)	형사(12개)	행정(11개)	전체(58개)
대등 : 일반	27 : 8	9 : 3	9 : 2	45 : 13

Ⅲ. 준비기와 실행기¹⁾의 설정

▣ 준비기: 2016년부터 2019년 정기인사 전까지 3년간

▣ 실행기: 2019년 정기인사 이후 폐지 선언 가능한 환경 성숙 시까지

▣ 참고: 2019년 25기 지법부장 1차 보임에 맞춘 고법부장 보임 패턴

- 고법부장 공식은 최근 고법부장 사직률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나, 최근의 사직감소 경향에 비추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음
- 상고법원: 2016년 하반기 3개부로 개원, 2017년 3개부 증부 가정

※ 상고법원 고려시²⁾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합계	현원	보임률
공식	15	12	23	23	10	18	18	10	14	14	14	17			
20기	9	1	1										18		
21기	5	6	5										16		
22기		5	12	2									19		
23기			5	13									18	40	45%
24기				8	10								18	52	35%
25기						12	5						17	70	24%
26기						6	10	1					17	77	22%
27기							3	9	5				17	78	22%
28기									9	10			19	86	22%
29기										4	14		18	101	18%
30기												17	17		

1) 이원화 폐지를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아니한 채 폐지 환경을 성숙시키는 단계

2) 기존 보고서에서는 25기가 2018년에 9명 1차 보임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준비기를 2018



※ 상고법원 불고려시(기본 보고서와 동일)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합계	현원	보임률
공석	15	12	13	13	15	15	16	9	12	13	11	16			
기수															
20기	9	1											17		
21기	5	6	2										13		
22기		5	9	1									15		
23기			2	10	2								14	40	35%
24기				2	13								15	51	29%
25기						13	2						15	70	21%
26기						2	12	1					15	77	19%
27기							2	8	6				16	78	21%
28기									6	9	1		16	86	19%
29기										4	10	1	15	101	15%
30기												11	11		

IV. 준비기 모습

1. 기본방향

- ▣ 일정한 숫자의 고법판사 선발을 계속함(20명 정도)
- ▣ 서울고법 대등재판부 수 현행 유지 또는 소폭 감소
 - 일반재판부 수의 유지 또는 소폭 증대
- ▣ 고법판사의 자발적 1심 복귀 및 고법판사 이외의 보직으로의 유도

나. 서울고법판사의 경향교류

- ▣ 대상: 25기 이하 중 지법부장으로 경향교류 하지 않은 고법판사
- ▣ 기간: 서울고법 인력 상황에 따라 1년 또는 2년 탄력 적용³⁾

년까지 3년간 확보하기 위하여 1차 보임시기를 2019년으로 가정함. 2018년에 25기에게 배분 될 공석 9개 중 5개를 24기 이상 기수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4개를 2019년 이후로 지연시킴

3) 25, 26기의 경우, 대부분 또는 상당수 지법부장들의 경향교류 기간이 1년이므로 이에 맞추고, 27기 이하의 경우, 부장 재판연구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법부장의 경향교류



■ 시기: 서울고법 근무 4년 후(5년차)

■ 수정 2안 준비기 경향교류 패턴

	합계	25기	26기	27기	28기	29기	30기
2016	16	7 ⁴⁾	9				
2017	8			8			
2018	7			1 ⁵⁾	6		
2019	6			1 ⁶⁾	1 ⁷⁾	4	
2020	-						-

다. 지방법원으로의 복귀 허용

- 복귀 가능 시기: 5년 근무 시 원칙적 허용, 5년 미만 시 예외적 허용
- 복귀 법원: 동기 지법부장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권역의 지방법원
- 각종 주요보직 수행에 제한이 없음

라. 1, 2심 교류 및 고법판사의 특수보직 보임

■ 보임 가능 보직

- 1심: 단독판사(교류 법관의 수 제한, 총 20명 이내)
- 특수보직: 부장 심의관, 부장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헌재 등 파견

■ 보임 시기 및 보임 기간: 고등법원 3년 이상 근무 후 2년간 교류 원칙

■ 제도 시행 시기

- 특수보직: 2016년부터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

기간이 2년이므로 서울고법의 인력상황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탄력적 운영을 하려는 것임

4) 25기 박○○ 포함 (재판연구관 근무에 이어 부장 재판연구관 1년 근무 후 2012년 고법판사 보임)

5) 27기 김○○ (재판연구관 근무에 이어 부장 재판연구관 1년 근무 후 2014년 고법판사 보임)

6) 27기 유○○ (재판연구관 근무에 이어 부장 재판연구관 2년 근무 후 2015년 고법판사 보임)

7) 28기 공○○ (재판연구관 근무에 이어 부장 재판연구관 1년 근무 후 2015년 고법판사 보임)



- 연도별 특수보직 신규 보임인원(보임기간 2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부장 재판연구관(18) (전속 12, 공동 6)		1	2	3	3	3	3
부장 심의관(7)	1	1	1	1	1	1	1
연수원 교수 등(16)		2	2	3	2	3	2
합계	1	4	5	7	6	7	6

● 1, 2심 교류: 2017년 시행

2017	2018	2019	2020	2021
12~13	10	10	10	10

마. 고법부장 보임

상고법원 고려						연도	상고법원 미고려					
'16	'17	'18	'19	'20	'21		'16	'17	'18	'19	'20	'21
23	23	10	18	18	10	선발인원	13	13	15	15	16	9
18	2					22기 ↑	11	1				
5	13					23기	2	10	2			
서울 1/2	서울 1/1						서울 0/2	서울 2/2				
	8	10				24기		2	13			
	서울 2/8 지방 1/3	서울 3/6 지방 1/2					서울 1/8 지방 0/3	서울 3/7 지방 1/3				
			12	5		25기				13	2	
			탄력적 선발							탄력적 선발		
			6	10	1	26기				2	12	1
			탄력적 선발							탄력적 선발		
				3	9	27기					2	8
				탄력적 선발						탄력적 선발		

※ 파란색: 전체 선발 인원 / 붉은색: 해당 지역 고법판사 現員 중 선발 인원

2. 실행기

가. 기본방향

- ▣ 고법판사 선발 본격적 축소 ⇨ 대등재판부 수의 축소



▣ 준비기 이행방안 적극적 (확대) 시행

나. 2019년 25기 지법부장의 고법부장 보임

- ▣ 고법판사에 대한 선호도 급감 ⇨ 고법판사 수 감소 ⇨ 이원화 형해화

다. 이원화 폐지 준비기 이행 방안의 적극적 (확대) 시행

1) 경향교류 확대

- ▣ 기간: 1년 ⇨ 2년 또는 3년

- ▣ 대상: 지방 근무 1년 만에 보임된 고법판사들 추가 경향교류 검토

2) 적극적 1심 복귀 유도

라. 이원화 폐지

- ▣ 폐지 (공표) 시기 ⇨ 일응의 기준으로, 서울고법의 “고법판사 : 고법배석” 비율이 “1 : 2” 정도가 되는 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음



V. 연도별 현황

▣ 연도별 시행 및 공표 사항

	상반기 시행	하반기 공표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법부장 직위 및 기존 보임 방식 유지 · 권역별 전보의 기본 원칙(경향교류) · 특수보직 보임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법부장의 고법부장 승진 보임 · 경향교류 · 특수보직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심 복귀 허용 · 1, 2심 교류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심 복귀 허용 · 1, 2심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기에 대하여도 기존 고법부장 보임 방식 유지 · 주요보직/차관급 처우의 1심 분배 정책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기 지법부장·고법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 고법부장 승진 보임 · 서울 이외 지역 가정법원장 주요보직화 · 지법 수석부장 중 일부에 지법부장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2. 2015년 하반기 공표사항

가. 공표사항

1) 고법부장 직위 및 기존 보임 방식 유지: 공표

- ▣ 고법부장 직위를 유지하고, 고법부장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보임함



● 공표 내용 중 고법부장 승진제 유지 기간에 대한 표현: 제1안

- 제1안: “당분간” 유지

■ 제2안과 같이 공표할 경우, 24기까지만 승진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 또는 25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려는 요구의 목소리가 예상됨

■ 추상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담을 줄임

- 제2안: “23, 24기까지는(또는 23, 24기에 대하여는)” 유지

■ 제1안과 같이 추상적으로 공표하는 경우 법관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고, 자신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예상됨

■ “23, 24기까지는 기존 보임 방식을 유지하고 25기는 결정된 바 없다” 고 알리는 것이 보다 충실한 답변임

■ 비판 가능성

● 고법부장 직위, 나아가 승진방식의 고법부장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소지 있음 ⇨ 다만, 23, 24기까지 고법부장 승진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법관사회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큰 동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2016년 고법판사 권역별 전보(경향교류)의 기본 원칙: 공표

■ 대상: 경향교류를 하지 않은 서울고법판사

■ 실시시기: 고법판사 4년 근무 후 실시

■ 기간: 동기 법관들의 지법부장 보임 후 지방권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함

● 25, 26기의 경우 1년으로 예정하고 있음

3) 고법판사의 1심 복귀 및 1심 교류: 공표하지 않음

■ 2016년에는 위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2015년에는 공표하지 않음



4) 특수보직 보임: 공표

■ 보임 대상 보직: 부장 심의관, 부장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 등 파견

● 보임기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당 보직의 보임 기간 = 일반적으로 2년
⇒ 굳이 공표할 필요성 없음

■ 보임 가능 시기: 원칙적으로 3년 근무 후

나. 공표시기: 11월 초 이전

■ 매년 12월 초에 다음 연도 정기인사 희망원을 제출받고 있음 ⇒ 경향교류, 특수보직 지원 등에 대한 충분한 숙고의 시간 부여

■ 이하 매년 공표 시기는 같음

3. 2016년

가. 상반기 정기인사 시 신규 시행 정책

■ 1, 2심 법관 대상 고법부장 승진 보임 유지

■ 경향교류

■ 특수보직 보임

나. 구체적 인사 현황

■ 서울고법 주심판사 공석 확보: 24개

경향교류	1심 복귀	1심 교류	특수보직	고법부장	사직	증부
16	-	-	4	0	0	4

● 고법판사 수 감소: 20명

- 경향교류: 서울 → 지방: 16명(25, 26기)



- 1심 복귀, 1심 교류 미실시
- 특수보직: 4명(부장 재판연구관 1, 부장 심의관 1, 사법연수원 등 2)
- ※ 위 20명은 예측치가 아니라 고법판사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일응의 목표치임 ⇨ 위 표에 있는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상고법원 고려 시 23기 고법판사 1명이 고법부장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바, 이 경우 특수보직 보임을 1명 줄여 고법판사 감소 숫자가 20명이 되도록 할 수 있음

● 재판부 증부: 4명(= 2개부 * 2명)

■ 고법판사 선발: 20명(서울고법) + α(지방권 고법)

● 서울고법판사 감소 및 선발 숫자 20명으로 동일 ⇨ 대등재판부 수 고정

■ 고법배석: 4명 순증 ⇨ 일반재판부 2개 증부

● 30기 고법배석 13명 지법부장 보임

● 고법배석 신규 보임: 32기 17명

■ 서울고법 구성: 전체 60개 재판부

대등재판부	일반재판부	고법판사	고법배석
45개	15개	92명	30명

다. 하반기 공표사항

1) 고법판사의 지방법원(지법부장)으로의 복귀 허용: 공표

■ 복귀 가능 시기: 5년 근무 시 원칙적 허용, 5년 미만 시 예외적 허용

■ 복귀 법원: 동기 지법부장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권역의 지방법원

■ 각종 주요 보직 수행에 제한이 없음

● 사무분담 및 주요 보직 보임 등에서 동기 지법부장들과 동등한 대우



2) 1, 2심 교류: 공표

- 보임가능 보직: 1심 단독 판사
- 교류 가능 시기: 원칙적으로 3년 근무 후
- 보임기간: 2년

4. 2017년

가. 상반기 정기 인사 시 신규 시행 정책

- 고법판사의 1심 복귀 허용
- 1, 2심 교류

나. 구체적 인사 현황

- 서울고법 주심판사 공석 확보: 22개

경향교류	1심 복귀	1심 교류	특수보직	고법부장	사직	증부
-8	6~7	12~13	5	3	1	2

- 고법판사 수 감소: 20명
 - 경향교류: -8명
 - 서울 → 지방: 8명(27기)
 - 지방 → 서울: 16명(2016년에 경향교류한 고법판사)
 - 1심 복귀 + 1심 교류 = 19명
 - 1차적으로 최대한 1심 복귀 유도하고, 나머지는 1심 교류 유도
 - 복귀 대상: 24기 8명, 25기 13명(2011년 보임 6명, 2012년 보임 7명), 26기 9명(2012년 보임)
- 24기는 고법부장 심사가 진행 중이고, 25기는 고법부장 심사가 임박한 상황
 - ⇒ 이원화 폐지가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24, 25기가 복귀를 희망할 것인



지 의문 ⇨ 5년 이상 근무한 고법판사의 1심 복귀 희망이 저조한 경우 5년 미만 근무한 고법판사에 대한 예외적 복귀 허용 범위 확대 적극적 검토 가능. 다만 5년 미만 근무 고법판사 중 1심 복귀 희망자가 많을 경우 적절한 제한을 통하여 제도의 급격한 약화 방지 내지 제도의 지속성 유지 필요

· 25기 이○○ 사법등기국장 보임기간 종료 ⇨ 보임기간 종료 후 행로(1심 복귀 여부 등)에 대하여 고법판사들이 매우 큰 관심을 가질 것임 (수정 2안 입장에서는 지법부장 보임이 그에 맞는 수순일 것임)

■ 교류 대상: 2014년 이전 보임된 고법판사 중 1심 복귀 대상이 아닌 고법판사, 즉 2013, 2014년 보임된 고법판사가 주된 대상임 ⇨ 주로 2013년 보임된 고법판사를 대상으로 교류 실시

· ⇨ 1심 교류 인원 수 산정은 고법판사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하여 유동적으로 운영될 필요 있음. 즉 다른 변수(경향교류, 1심 복귀, 특수보직, 고법부장 승진자, 사직자, 증부 등)에 의하여 산출되는 숫자를 고려하여 1심 교류 인원을 탄력적으로 결정함 ⇨ 가령 1심 복귀 희망자가 적거나 사직자가 없으면 1심 교류를 그만큼 늘릴 수 있음

- 특수보직: 5명(부장 재판연구관 2, 부장 심의관 1, 사법연수원 등 2)
- 고법부장 승진: 23기 2명, 24기 1명(상고법원 고려 시 23기 1명, 24기 2명)
- 사직 1명

● 재판부 증부: 2명(= 1개부 * 2명)

■ **고법판사 선발: 18명(서울고법) + α(지방권 고법)**

● 서울고법판사 감소(20) > 선발(18) ⇨ 대등재판부 1개 축소

■ **고법배석: 4명 순증 ⇨ 일반재판부 2개 증부**

- 31기 고법배석 7명 지법부장 보임
- 33기 11명 고법배석으로 선발

■ **서울고법 구성: 전체 61개 재판부**



대등재판부	일반재판부	고법판사	고법배석
44개	17개	90명	34명

다. 하반기 공표사항: 없음

▣ 지법부장까지 대상으로 한 고법부장 승진제 유지 ⇨ 공표하지 않음

- 다음 연도(2018년) 정기인사에서도 기존 방식의 고법부장 승진제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클 것임
 - 신임 대법원장이 2018년에 첫 번째 정기인사를 함
 - 2018년 정기인사 시 (23, 24기를 지나) 본격적인 이원화 이행기 1세대인 25기가 법조경력 22년을 채워 과거의 예에 따르면 그들에 대한 고법부장 1차 심사가 예정됨
- ⇨ 2018년 정기인사 시 25기에 대한 고법부장 보임을 하지 않음을 전제로 위 사항에 대한 공표를 할 필요는 없음
 - 2017. 12.에 25기는 2018년에 고법부장에 보임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음
 - 고법부장 이상 법관에 대하여 퇴직 후 대규모 로펌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인사실에서는 2015년부터 정기인사 전에 고법부장 심사대상자들을 상대로 고법부장 보임 희망 여부 및 희망 임지를 파악하고 있음
 - 향후에는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정기인사 희망원을 제출할 때 고법부장 보임 희망 여부와 희망 임지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임
 - 2018년에 25기에 대한 고법부장 보임을 하지 않음에 대한 정책결정이 확실히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2018년도 정기인사 희망원을 2017. 12.에 제출받을 때, 24기 이상에게만 고법부장 보임 희망 여부 및 희망 임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2018년에 25기에 대한 고법부장 보임을 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음



- 그 이전에도 2018년에 25기에 대한 고법부장 보임이 없을 수 있음을 비공식적/간접적으로 알릴 필요 있음

5. 2018년

가. 상반기 정기 인사 시 신규 시행 정책: 없음

나. 구체적 인사 현황

▣ 서울고법 주심판사 공석 확보: 22개

경향교류	1심 복귀	1심 교류	특수보직	고법부장	사직	증부
-1	4	10	3	3	1	2

● 고법판사 수 감소: 20명

- 경향교류: -1

- 서울 → 지방: 7 (27기 1명, 28기 6명)
- 지방 → 서울: 8명(2017년에 경향교류한 고법판사)

- 1심 복귀 + 1심 교류 = 14명

- 1차적으로 최대한 1심 복귀 유도하고, 나머지는 1심 교류 유도
- 복귀 대상: 2013년 이전 보임 고법판사
- 교류 대상: 2015년 이전 보임 고법판사 중 1심 복귀 대상이 아닌 고법판사, 즉 2014, 2015년 보임된 고법판사가 주된 대상임 ⇨ 주로 2014년 보임된 고법판사를 대상으로 교류 실시

- 특수보직: 3명

- 신규 보임 7명(부장 재판연구관 3, 부장 심의관 1, 사법연수원 등 3)
- 특수보직 복귀 4명(2016년에 특수보직에 보임된 4명)
 - 특수보직에서 복귀하는 고법판사들의 행로(1심 복귀 여부)에 대하여 고법판사들이 매우 큰 관심을 가질 것임



- 고법부장 승진: 24기 3명
- 사직 1명

- 재판부 증부: 2명(= 1개부 * 2명)

▣ 고법판사 선발: 18명(서울고법) + α(지방권 고법)

- 서울고법판사 감소(20) > 선발(18) ⇨ 대등재판부 1개 축소

▣ 고법배석: 4명 순증 ⇨ 일반재판부 2개부 증대

- 32기 고법배석 23명 지법부장 보임
- 33, 34기 27명 고법배석으로 선발

▣ 서울고법 구성: 전체 62개 재판부

대등재판부	일반재판부	고법판사	고법배석
43개	19개	88명	38명

다. 하반기 공표사항

1) 기존 고법부장 보임 방식의 유지: 공표

▣ 공표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기존의 고법부장 보임 방식이 25기 이하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법관사회에 충분히 공유되고 있다면 공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그러나 법관사회에서 23, 24기와 이원화 이행기 1세대인 25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본질적으로 다름 ⇨ 법관들은 25기의 고법부장 보임 방식을 통하여 대법원의 이원화에 대한 정책방향을 가늠하려 할 것임 ⇨ 아무런 입장 발표 없이 넘어가기는 힘들 것임
- 특히, 25기 지법부장을 고법부장에 보임하기 위하여는, 그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고법부장 보임 희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시기는 2018. 12.에 2019년도 정기인사 희망원을 제출받을 때임 ⇨ 25기에게도



기존의 고법부장 보임 방식이 유지됨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임

■ 공표로 인한 부담

- 법관들은 이원화 폐지(수정 2안)가 아니라 25기에게 기존의 고법부장 보임방식을 유지하는 것(수정 3안)만으로 과거로의 회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음 ⇨ 부담 극대화
- 아래의 “주요보직 및 차관급 처우의 1심 분배 정책”을 함께 공표하고 즉시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예시) 2019년부터 서울 이외 지역 가정법원장(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주요보직화, 지법 수석부장 중 일부에 지법부장 보임

2) 주요보직 및 차관급 처우의 1심 분배 정책: 공표

- 기존 고법부장 보임방식을 유지한다고 공표하는 것과 연계하여 주요보직 및 차관급 처우의 1심 분배정책을 함께 공표
- 지법부장에게 주요보직 보임 기회 부여

- 25기 이하부터 지법부장 중에서도 주요 보직에 보임함
- 분배 대상 주요 보직의 범위: 1심 주요보직 + 특수보직
- 구체적인 보임비율(가령 “1심은 전부 1심 법관으로, 특수보직은 1/2을 1심 법관으로 보임”): 공표하지 않음

■ 차관급 처우의 분배

- 1심
 - 차관급 처우 대상 1심 주요보직의 설정 범위: 현행 유지, 가정법원장, 소규모 수석부장, 대규모 지원장, 중규모 지원장 중 어느 범위까지 주요보직으로 설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책결정 후 공표 필요
 - 보임방식(적임자보임, 순환근무제 등), 중복보임 가능 여부 및 보임 기간 등: 공표하지 않음



- 다만, 지원제와 관련하여 보임 대상 법관에게 공직자윤리법상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고법부장처럼 보임 희망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음

● 2심

- 예우(전용차량 지급)와 의무(재산 공개 등)의 분리
- 2심 법관 중 예우를 받는 대상자 선정 기준

● 관련 규칙 개정 필요성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 차관급 처우 대상 1심 주요보직의 범위가 현재보다 확대되는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 필요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 2심의 경우 예우와 의무가 분리되므로, 현재 고법부장 모두에게 차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 필요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차량의 구분등)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영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의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영 기준(제2조제2항 관련)

용도	규모	배 정 대 상	차량 관리·운영기준
승용 (전용)	대형 및 중형	○대법관 또는 법원행정처장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또는 차관급인 법원공무원	○최단운영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 1심 분배 정책을 2015년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위에서 2017년에 25기에 대하여 기존 고법보장 보임 방식을 유지한다고 공표할 경우 발생할 반발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고법보장 보임 방식



유지의 공표와 연계하여 “주요보직 및 차관급 처우의 1심 분배 정책”을 공표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주요보직 및 차관급 처우의 1심 분배 정책”을 2015년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 이러한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

- 이원화 준비기는 이원화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차기 대법원장이 이원화를 폐지하거나 유지하는 결단을 함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현 상태를 잠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수정 2안이나 수정 5안이나 주요보직과 차관급처우를 1심으로 분배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같은 입장임
- 분배 대상 기수를 23기 이하로 한다고 하여 수정 2안의 시행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반면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이원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고법판사가 선발된 23, 24기를 1심 분배 정책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23기부터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수이더라도 고법부장 보임을 희망하지 않고 1심 잔류를 희망하는 법관이 있을 수 있음
- 2015년에 1심 분배정책을 공표하는 경우 법관들이 이원화가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현재 동요하고 있는 법관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음

6. 2019년

가. 상반기 정기 인사 시 신규 시행 정책

- 25기 지법부장, 고법판사 모두를 대상으로 고법부장 승진 보임
- 서울 이외 지역 가정법원장 주요보직화, 지법 수석부장 중 일부에 지법부장 보임

나. 구체적 인사 현황



▣ 기존의 서울고법 주심판사 공석 확보 정책의 한계⁸⁾

경향교류	1심 복귀	1심 교류	특수보직	고법부장	사직	증부
-1	?	-2~-3	1	?	?	2

● 경향교류: -1

- 서울 → 지방: 6명(27기 1명, 28기 1명, 29기 4명)
- 지방 → 서울: 7명(2018년에 경향교류한 고법판사)

● 1심 교류: -2~-3

- 서울고법 주심판사 공석 확보에 1심 교류 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불가능함 ⇨ 2017년에 1심 교류한 고법판사가 고등법원으로 복귀하고(12~13명), 그 수가 2019년에 1심과 교류하는 고법판사의 수(10명)보다 많음 ⇨ 서울고법 주심판사 공석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음

● 특수보직: 1

- 신규 보임 6명(부장 재판연구관 3, 부장 심의관 1, 사법연수원 등 2)
- 특수보직 복귀 5명(2017년에 특수보직에 보임된 5명)

● 1심 복귀, 사직: 고법부장 3차 승진에 실패한 24기 4명은 1심 복귀 또는 사직 예상

▣ ⇨ 정면에서 고법판사의 1심 복귀를 최대화하고, 아울러 고법판사 지원 감소를 통한 고법판사의 선발을 본격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대등재판부수의 축소 작업 진행 필요

- 1심 복귀 가능 시기를 고법판사 5년 근무 후에서 4년이나 3년 근무 후로 점진적으로 당길 필요 있음

다. 하반기 공표사항

8) 표의 '?'는 당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의미임



- 이원화 폐지 공표가 가능한 환경이 성숙할 때까지 기존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외에 신규 정책의 발표를 예정하지는 않음
 - 다만, 상황에 따라 기존 정책을 일부 변경/수정할 수 있음
 - 경향교류의 기간 및 대상 확대 등

수정안의 주요 내용

2015. 8. 28.

I. 각 수정안의 구체적 인사 모습

1. 수정 2안

- 가. 기존 고법판사들의 1심 복귀 : 고법판사들의 의사 존중(10년 임기 보장)
- 기존 고법판사들에 대한 신뢰를 최대한 존중하여, 당초 예정된 10년의 임기를 보장함
 - 임기 후에는 1심으로 전보함
 - 다만, 임기 안에 지방법원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동일 기수 지법판사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권역의 지방법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분담 등에서 동기들과 동등한 대우를 함
 - 2016년 28/29기 15명, 30기 2명 고법판사로 선발함
 - 2019년에는 전원 복귀
- 나. 고법부장 보임 : 25기부터 주요보직의 1심 분배를 전제로, 상고법원 주고려
- 2016년 21기 2인, 22기 9인, 23기 2인
 - 2017년 22기 1인, 23기 10인, 24기 2인

2. 수정 2안의 연착륙 방안 (≍ 수정 3안)

- 가. 검토배경 : 폐지안의 1회적 공표 및 시행의 충격과 반발에 대비한 단계적 시행 및 연착륙 방안 검토
- 나. 준비기와 실행기의 분류 : 2019. 25기의 고법부장 보임
- 다. 수정 2안의 준비기
- 1) 기본방향
 - 20명 정도의 고법판사 계속 선발
 - 서울고법 대등재판부 감축
 - 자발적 1심 복귀 유도
 - 2) 경향교류 - 25기 이후 지법부장으로 경향교류 안 한 고법판사
 - 기간 : 1년 또는 2년 탄력적 운용
 - 시기 : 근무 5년차
 - 3) 희망에 따른 지법 복귀 허용
 - 시기 : 2016.부터 & 고법판사 5년 근무 후
 - 복귀법관의 경향교류 면제 불허
 - 4) 1,2심 교류 및 특수보직 보임
 - 시기 : 3년 근무 고법판사 / 특수보직은 2016.부터, 1,2심 교류는 2017.부터

- 기간 : 2년간 단독판사 및 특수보직 보임 가능

라. 수정 2안의 실행기

- 1) 기본방향 : 고법판사 선발 본격 축소
- 2) 적극적 시행 : 경향교류 확대 및 1심 복귀 적극 유도
- 3) 이원화 폐지

마. 연도별 시행

- 2016 : 23기 고법부장 보임 / 경향교류 15명 / 특수보직 보임
- 2017 : 24기 고법부장 1차 보임 / 경향교류 27기 8명 / 1심 복귀, 1,2심 교류 시작 / 특수보직 보임
- 2018 : 24기 2차 보임 / 경향교류 28기 6명
- 2019 : 25기 1차 보임 / 경향교류 29기 4명
- 2020 이후 : 폐지시점 선택

3. 수정 5안

가. 내용

- 요약표 참조

나. 일부 수정안

- 1) 고법판사의 부장 연구관, 부장 심의관 보임
 - 이원화 완성기(2021) 이후 → 원칙적 보임, 5/ 16 및 2/7
 - 이원화 완성기 이전 → 허용하되, 보임 규모를 한정
 - 운용 방안
 - * 부장 심의관 : 3,4년 근무한 고법판사 → 2년 근무 후 재판부 복귀
 - * 부장 연구관 : 1년 근무한 고법판사
- 2) 연수원 교수,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 이원화 완성기(2021) 이후 → 원칙적 보임, 3/13 및 1/2
 - 이원화 완성기 이전 → 허용하되, 보임 규모를 한정
 - 운용 방안 : 3,4년 근무한 고법판사
- 3) 고법판사 3년 근무 후 1심 교류
 - 2년 내외 단독 근무
 - 지법부장의 고법 근무도 소규모 시행

II. 각 수정안의 연도별 실행 모습

1. 수정 2안

가. 전제

- 수정 2안을 2016년 하반기에 공표하여 2017년부터 시행
- 25기부터 주요보직의 1심 법관에 대한 분배 시작(2020년 또는 2021년)

- 상고법원이 2016년 3개부로 개원하여 2017년 6개부로 확대

나. 2015년 하반기

- 공표사항
- ㉠ "당분간(또는 23,24기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방식의 고법부장 보임을 유지함"
- ㉡ "2016년에 고법판사의 권역별 전보가 없을 것임"

다. 2016년

1) 고법부장

- 22명 보임: 21기 3명, 22기 12명, 23기 7명
- 상고법원이 하반기에 개원하는 경우
 - * 상반기: 21기 3명, 22기 10명
 - * 하반기: 22기 3명, 23기 6명
- 상고법원 불고려 時 13명: 21기 2명, 22기 9명, 23기 2명

2) 서울고법

- 고법판사 17명(28기 4명, 29기 11명, 30기 2명) 서울 고법에 보임
- 서울고법 배석 25명(30기 13명, 31기 7명, 32기 5명) 중 30기 13명은 지방권 지법부장으로 신규보임. 나머지 12명은 잔류
- 고법판사는 2015년 93명에서 110명으로 증가

3) 기타

- 상고법원 개원(3개부)
- 30기 지법부장 신규 보임
- 정기 인사 직후 연구반 구성 및 활동 개시
- 하반기에 수정 2안(고법부장 승진제 유지, 이원화폐지, 1심 법관에게 주요보직 보임 기회 부여) 공표

라. 2017년: 이원화 폐지

1) 고법부장

- 22명 보임: 22기 1명, 23기 10명, 24기 11명
- 상고법원 불고려 時 13명: 22기 1명, 23기 10명, 24기 2명

2) 서울고법

- 서울고법판사 중 86명 서울/경인권 지법부장으로 복귀, 24명 잔류
- 지방권 고법판사는 전원 소속 권역 지법부장으로 복귀
- 기존 고법배석 12명 전원 지법으로 복귀(31기 7명: 지법부장 신규 보임, 32기 5명: 서울권 지법판사)
- 32기 43명, 33기 57명 서울고법 배석으로 보임(보임기간 3년 가정)

3) 기타

- 상고법원 확대(3개부 → 6개부)

- 31기 지법부장 신규 보임
- 9월 차기 대법원장 취임

2. 수정 2안의 연착륙 방안 (≍ 수정 3안)

	상반기 시행	하반기 공표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법부장 직위 및 기존 보임 방식 유지 · 권역별 전보의 기본 원칙(경향교류) · 특수보직 보임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법부장의 고법부장 승진 보임 · 경향교류 · 특수보직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심 복귀 허용 · 1, 2심 교류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심 복귀 허용 · 1, 2심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기에 대하여도 기존 고법부장 보임 방식 유지 · 주요보직/차관급 처우의 1심 분배 정책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기 지법부장·고법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 고법부장 승진 보임 · 서울 이외 지역 가정법원장 주요보직화 · 지법 일부 수석부장에 지법부장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3. 수정 5안

가. 전제

- 수정 5안을 2015년 하반기에 공표하여 2016년부터 시행
- 23기부터 주요보직의 지법부장에 대한 분배 시작(2018년 또는 2019년)
- 상고법원 변수는 별도로 고려

나. 2015년 하반기

- 공표사항
- ① “고법부장 직위 유지. 23, 24기의 경우 지법부장과 고법판사 대상 고법부장 보임. 25기 이후부터는 고법판사 중 고법부장 보임. 23기부터 1심 법관과 2심 법관 사이에 주요보직 배분 시작”
- ② “2011년 보임된 23기, 24기 고법판사부터 지방권 전보 시작”
- ③ “2018년 이후 이행기 대상 법관들에게 고법판사 보임 기회 추가 제공”

다. 2016년

1) 고법부장

- 15명 보임: 21기 2명, 22기 8명, 23기 5명(지법부장 3명, 고법판사 2명)
- 상고법원 개원 時: 20기 2명, 21기 3명, 22기 10명, 23기 7명(지법부장 5명, 고법판사 2명) 합계 22명 보임

2) 서울고법

- 고법판사 21명(28기 3명, 29기 10명, 30기 8명) 서울고법에 보임
- 고법판사 23기 3명, 24기 4명 지방권 전보
- 고법판사는 2015년 93명에서 104명으로 증가(고법배석은 18명)

3) 지방권 고법

- 고법판사 4명(28기 1명, 29기 2명, 30기 1명) 지방권 고법에 보임
- 고법판사는 2015년 14명에서 2016년 23명으로 증가(고법배석은 52명)

4) 기타

- 상고법원 개원 時(3개부) ⇨ 고법부장 보임규모가 15명에서 22명으로 증가
- 30기 지법부장 신규 보임

라. 2017년

1) 고법부장

- 16명 보임: 22기 1명, 23기 8명(지법부장 6명, 고법판사 2명), 24기 7명(지법부장 2명, 고법판사 5명)
- 상고법원 고려 時 19명: 22기 2명, 23기 8명, 24기 9명 합계 19명 보임

2) 서울고법

- 고법판사 21명(29기 6명, 30기 8명, 31기 7명) 서울고법에 보임
- 고법판사 24기 4명, 25기 7명 지방권 전보
- 고법판사는 2016년 104명에서 112명으로 증가(고법배석은 12명)

3) 지방권 고법

- 고법판사 4명(29기 1명, 30기 2명, 31기 1명) 지방권 고법에 보임
- 고법판사는 2016년 23명에서 29명으로 증가(고법배석은 43명)

4) 기타

- 상고법원 확대(3개부 → 5개부)
- 31기 지법부장 신규 보임
- 9월 차기 대법원장 취임

Ⅲ. 수정안에서의 근무의욕 고취 및 재판의 질 향상

- 본책 p.135 이하

Ⅳ. 차관급처우의 분배

- 본책 p.144 이하 [끝]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야당 설득 및 대응 전략

2015. 9.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안에 대한 법사위 내 야당 의원들의 무관심·반대 기류 심각한 상태**
 - 최근 한명숙 사건 선고 이후, 급격히 야당 내 부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 분위기 반전의 모멘텀 없이는, 법무부와의 협상을 매개로 한 여당 설득에 성공하더라도, 법률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됨
- **반대 성향 야당 의원들에 대한 구체적 설득·대응 전략 모색 필요**
 - 법률안 통과를 위한 시간적 여유 부족한 상황에서, 반대 의원들의 입장 전환 또는 적어도 극렬한 반대 의사 표명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실효적 설득 방안 절실
 - 법사위 내부 포함 야당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 설득 방안 수립

2. 상고법원 관련 최근 야당의 현황

가. 야당의 전반적 분위기

- **당 지도부(문재인 당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 - 무관심**
 - 최근 중앙위원회 혁신안 의결, 문재인 대표 재신임 등을 둘러싸고 급박한 상황 전개로 상고법원 자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상고법원안은 그 자체로는 정치적 쟁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법사위에 일임하는 분위기임**
- 다만, 한명숙 사건 선고 결과에 대하여 정치적 해석 가미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크게 확산되어 있어, 상고법원 추진에도 상당한 난관으로 작용할 여지 있음**

☑ **문재인 당재표 8. 21.자 제7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사법부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특히 **대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화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판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신호탄이다.**”

▣ **법사위 - 강경 분위기 고조**

- 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오해
 - 상고법원 운명이 청와대 내지 여당 결단에 달렸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숨은 의도가 담긴 판결이라고 해석
 - 특히 대법원이 상고법원 통과를 위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판결을 하였다는 오해가 많음
 - 앞으로 진행될 야당 정치인에 대한 판결에서도 그와 같은 경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짐
- 보수화된 사법부 주요 추진 정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인식 팽배
 - 한명숙 사건 선고로 대법원장님 취임 이후 대법원이 보수화되었다는 편향된 인식 더욱 증폭됨
 - 대법원장님 최대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하여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서, 이를 좌초시켜 **사법부를 견제하겠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음
- 일부 의원들의 경우 무관심 스탠스로 전환하려는 분위기
 - 우호적 찬성 의원들도 강경 분위기에 밀리는 상황
 - 당내 계파 싸움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임기 4년차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할 상황에서, **주요 정치 현안 아닌 상고법원에** 대하여 무리하게 **관심과 힘**



을 기울이지 않겠다는 분위기 감지되고 있음

나. 주요 법사위원들 입장

1) 반대 성향 의원들 입장 더욱 고착

■ 전해철 의원

- 전해철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맡아 한 전 총리와 개인적 친분이 두텁고 더구나 한 전 총리가 당 대표일 때 공천을 받았음
- 법사위 간사로서 당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책임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외적·공식적으로는 한명숙 사건 판결을 계기로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상고제도 개선의 전제조건임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취지로 주장

☑ 전해철 의원 최근 언론 인터뷰(연합뉴스 8. 23.자) 발언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판결이 나온 배경 중 하나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결여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상고법원 설치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국회 내부에서는 이보다 훨씬 강한 톤으로 상고법원안 및 사법부 전체에 대하여 신랄할 비판의 목소리 높이고 있다고 함

☑ 전해철 의원의 국회 내부에서의 비공식 발언(의원실 보좌진 전언)

“이번 한명숙 사건 선고로 상고법원은 물 건너 갔다. 상고법원 법안에 결코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이다”

■ 서기호 의원

- 법관 시절 재임용 탈락 등으로 인한 법원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벗지 못하고, 상고법원에 대한 고의적인 발목 잡기 스탠스 유지
- 사실심 충실화가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 내부의 소수 반대 법관들 의견을 입수하여 상고법원이 사법부 내부에서도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한 선부른 정책이라고 공격

☑ 서기호 의원, 9. 15. 대전/광주고법 국정감사 질의



“사실심법관 증원, 사실심충실화를 통해 상고사건을 줄이고 상고사건 제한해야 한다는 차○○ 판사 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2) 찬성 또는 유보 의원들도 상고법원 찬성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없는 분위기

■ 서영교 의원

- 기본적으로 사법부와 우호적 관계 유지하려는 생각에서 상고법원에 대하여 사실상 찬성에 가까운 유보 입장 취해 옴
- 그러나 정치적 상황에 항상 민감하게 촉각을 세우고 대응하는 스타일답게, 한명숙 사건 선고 이후 야당 내 분위기에 편승하여 최근 신중론으로 돌아섬

☑ 서영교 의원 최근 언론 인터뷰(연합뉴스 8. 23.자) 발언

“그렇지 않아도 상고법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번 한 전 총리 판결이 향후 논의의 중차대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박지원 의원 등

- 박지원, 임내현 등 찬성 의원, 우윤근, 이춘석 등 사실상 찬성에 가까운 유보 입장 의원들도 당분간 당내 강경파 목소리에 눌려 상고법원에 대하여 나서서 옹호하기 어려운 상황
- 야당 내 일각에서는, 그간 사법부와 꺾끄러운 관계가 부담되어 상고법원 지지 의사 밝혔던 박지원 의원 등이 최근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받을 뻔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음

3. 설득 및 대응전략

가. 기본 방향 ⇨ **야당 법사위원 접촉·설득을 통한 법사위 내부 분위기 전환**

- ① 법사위원 직접 접촉·설득과 야당 지도부 등을 통한 우회 설득 방안 병행



- ② 한명숙 판결에 대한 비판의 온도차를 고려한, 접촉·설득 논리 및 시기 등 차별화
- ③ 법사위 내 지위, 상고법원에 대한 기존 입장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접촉·설득 추진
- ④ 최후의 카드로, 파격적 설득 방안 모색

나. 구체적 접촉·설득 방안

1) 설득의 주된 논리

■ 법원의 '진정성'

- 원세훈 사건과 한명숙 사건에서 대법원의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
- 대법원의 원세훈 사건 판결, 한명숙 사건 판결은 법과 원칙에 따른 독립적인 판결 결과이고, 상고법원 등 대법원이 추진하는 정책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킴
- 대법원의 한명숙 사건 판결에 대한 야당의 비난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주지시킴 ⇨ 이를 매개로 법원에 우호적인 야당 중진의원들 설득에 보다 주력

■ 상고법원 법안은 정쟁의 산물이 될 수 없고 '진정한 의미의 사법개혁'

- 현재의 상고심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상고심 제도 개선은 향후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사법제도의 틀을 만드는 중차대한 작업임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서는 항상 다양한 반대 의견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반대 의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고심제도 개선을 미룬다면 국회 본연의 임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들



이 피해를 입음

- 이번 정기국회가 19대 국회에서 상고법원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고, 이를 놓친다면 최소 10년 이상 현행의 비정상적인 상고심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호소

■ 법안 자체의 수정 가능성

- 언제든지 쟁점 사항에 대한 국회 수정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음을 표명

2) 주요 의원별 설득 방안

■ 전해철 의원

- 야당 간사이자, 서기호 의원 등 야당 소장 의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설득 대상
- 그러나 자기 주관과 고집이 세고, 최근 한명숙 사건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일정 기간의 냉각기 가질 필요
- 냉각기 거친 후, 정서적·감성적 흡소 전략 구사
 - 이성적·논리적 접근으로 설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님
 - ①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상고사건 적체로 처해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주문, ②그나마 사법부만이 여당과 검찰을 제어·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역할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사법부 최대 추진 사업에 협조 또는 반대 목소리를 낮춰 줄 것 흡소

■ 법사위원장

- [목표] 기존 지지 입장 확고히 흔들리지 않도록 설득
- [방법] ①법사위의 법률안 심사 실적 매우 저조하므로, 법률안 심사 드라이브 걸겠다는 법사위원장의 의지와 역량 적극 활용, ②적극 접촉으로 인적 유대관계 강화 통한 정서적 접근, ③내년 총선에서 유



리하게 내세울 수 있는 공약의 기초 소스 제공(ex. 대전 제2전산정보센터 설치, 특허법원 관할 집중 법률안 통과 등)

▣ 그 외 야당 법사위원들

- 지속적 접촉·설득으로 상고법원에 대한 관심 꺼지지 않도록 함
- 박지원, 우윤근, 이춘석 의원 등 중진의원들에게 리더십 발휘 요청

3) 구체적 방법

▣ ① 직접 접촉

- 한명숙 사건으로 매우 격앙되어 냉각기 필요한 의원 제외하고, 지속적인 만남 추진
- 안전 지정 협조 요청
 - 국정감사 이후 열리는 최초 법안 심사 단계부터 상고법원 법안이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회의 일정과 안전이라도 잡아 달라고 도움 요청
- 의원들 수정 요구안 반영
 - 의원들이 지적하는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수정안을 미리 만들어 계속 접촉하면서 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의원들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에 치중

▣ ② 야당 지도부 등을 통한 우회적 설득

- 당 지도부 상황
 - 현재 중앙위원회 혁신안 의결, 문재인 대표 재신임, 내년 총선 전략 수립, 국회의원 공천 방안 확정 등 당내 시급한 현안이 너무 많아 지도부를 설득하여 상고법원에 대한 ‘당론 찬성 내지 지지’ 등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이끌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지도부 면담 추진
 - 다만 문재인 당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법조인이므로, ‘상고심제도 개선 필요성’



의 관점에서 면담 추진은 시도해 볼 만함 ⇨ 면담 성사만으로도 야당 내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데 상당한 영향 있을 것

- **[최재천 정책위의장]** 법원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점 활용하여, 상고심제도 개선 필요성, 법원의 진정성 등을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당내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과 법사위 간사와 1소위 위원들 설득에 대한 자문과 도움 요청

- **[문재인 당 대표]**

■ 전해철 의원에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

■ 그러나 현재 급박한 당내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향후 정국 상황을 보고 판단할 필요 있음

■ 법원 내부의 친분 두터운 인사(ex. 경남고 동창인 인천지법 김○○ 부장판사 등)를 통해 비공식 사전 접촉하는 방안 모색 가능

● 전병헌 의원을 통한 전해철 의원 설득 방안

- 전병헌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사적으로 절친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병헌 의원 본인도 전해철 의원 설득의 책임자로 자인하고 있음

■ 상고법원에 대해 전폭적 지지 의사 밝히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정치인답지 않은 우직하고 솔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추진력도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전해철 의원 설득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전병헌 의원 9. 17.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면담 시 발언**

“상고사건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고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상고법원 도입을 연결짓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당내 지도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큰 관심 없는 상황이므로, 지난 5월 조선일보 기획기사와 같이 유력 언론에 상고사건 적체로 국민들이 직접적 피해 입고 있는 실제적 사례 등을 실감나게 부각시키는 이벤트성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야당 의원들을 움직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다만, 최근 전병헌 의원이 속한 정세균 계파와 ‘친노’ 간 갈등 불거진 상황에서, ‘친노’ 핵심 브레인인 전해철에게 주요 정책 관련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분석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 있음

☑ **머니투데이 9. 9.자 “정세균, 문재인 대표에 당 혁신위한 대결단 촉구”**



「5선 의원인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가 9일 문재인 대표에게 당의 혁신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가 야권 전체의 단결과 통합, 혁신의 대전환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대결단을 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범친노 수장인 정 전 대표가 문 대표에게 사실상 2선 후퇴를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 [3] 대법원 국정감사 활용

-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예상되는 의원들의 상고법원 관련 질의에 대한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상고법원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필요
 - 상고법원 도입의 진정성, 불가피성, 시급성 논리 유지
 - 특히 대법원장님 말씀을 통해서는 ‘상고법원이 법원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법원의 진정성을 꼭 알아 달라’ 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법사위원들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도
- 국정감사장이 법정 막말, 처신상 잘못 등으로 **Negative Hearing**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내부 단속에 유의

■ [4] 언론을 통한 간접적 압박

- [목표] 언론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확산 ⇨ 국민의 목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법사위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함
- [활용 언론] 주요 메이저 언론 ⇨ 조선, 중앙, 동아 등
 - 야당 의원들도 한겨레, 경향신문보다 3대 주요 메이저 언론 기사 내용에 더 민감
- [기사 방향 ①] 상고법원 설치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점 재확인
 -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으로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제도 개선 강조
 - 현재 상고심 지연 폐단이 두드러지는 구체적 사례, 국민 실생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소개
- [기사 방향 ②] 올해 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각인



- 17대부터 이어온 상고심제도 개선 논의 경과 심층 소개
- 19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향후 개선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점 설명

● [기사 방향 ③] 법사위 논의 지지부진에 따른 책임론 부각

- 작년 12월 발의 이후 지금까지의 법안 심사 경과, 공론화 과정, 찬반 의견의 허와 실 등 상세 소개
- 결국, 법사위 소수 의원들의 독단과 오해로 인해 제도 개선 좌초될 상황이라는 위기의식 확산 ⇨ 해당 의원들의 심리적 부담감 가중

■ ⑤ 법사위원장, 법사위 여야 간사 등 초청 대법원장님 공관 만찬 실시

- [취지] 대법원장님께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법사위원장, 법사위 여야 간사 등을 상대로 직접 상고심제도 개선의 필요성 설명하고 국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 마련
- [기대효과] 해당 의원들이 사법부의 상고심제도 개선 의지와 절박함을 실감하고, 법률안 처리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매우 커질 것
- [고려사항 ①] 언론 등 외부의 시선 ↔ (i) 이미 상고법원이 대법원장님께서 적극 추진하시는 최대 역점 사업이라는 사실 공론화되어 있는 상황, (ii) 법률안 통과 예측불허인 시점에 최선을 다한다는 시각 외 새삼스러운 비판은 없을 것
- [고려사항 ②] 대법원장님 위상에 흠이 생길 우려 ↔ (i) 격에 맞지 않은 점이 없지 않으나, 이미 언론사 사회부장 등 그보다 훨씬 격이 낮은 인사 초청한 바 있음, (ii) 최후의 카드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우려되는 사정은 감수하고 추진 검토할 필요 있음
- [시기] 10월 중순경 실시
 - 10. 8.까지 국정감사 예정되어 있어 그 이전 실시 부적절



-
- 법률안 심사 개시될 10월 말 이전에 실시하여, 마지막 입법추동력 확보의 전기로 활용

- [실시 방법 및 초청 대상]

- 우선, 법사위원장 및 양당 간사(이한성, 전해철 의원) 등 법사위 집행부만 초청하여 실시 ⇨ 참석자들 반응 및 성과 점검
- 1차 공관 만찬 실시 후, 기대효과 큰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전체 법사위원들 대상 추가 실시 여부 검토

정기국회 이후 성공적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대응전략

□ 검토배경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종료 후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개시되면 19대 국회 임기 내 법률안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golden time이 도래될 것임. 현재 행정처는 법률안 통과를 당면한 사법부 최대목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총력전 태세를 구축하고 있음. 하지만 입법추진환경에 부정적 외생변수가 많이 상존하고 있어 현재 상황이 극적으로 호전되지 않으면 입법성사가 난망한 중대한 기로에 봉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상고법원 법률안은 현재 사법부 최대의 역점사업임은 너무나 공공연한 사실임. 따라서 그 입법추진이 실패하면 ①과거 17대 국회의 경험에 비추어 또다시 10년 가까이 상고심 구조개혁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고, ②대외적으로 사법부의 위상이 추락하고, 법원 내부적으로도 CJ의 리더십 약화라는 최악의 위기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현재 급변하는 입법추진환경에 대한 냉철한 진단·분석과 정확한 장래 예측을 토대로 ①유리한 입법여건 구축을 위한 국면전환 대응전략과 법사위 통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②입법추진 실패시 그 충격과 후폭풍의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출구전략의 수립도 필요함

□ 현재 입법추진환경에 대한 분석

○ BH

- 8. 6. CJ와 VIP 직접 면담에서 법무부와의 협상지시는 이끌어 냈으나 상고법원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얻지 못한 절반의 성공에 그침. 하지만 핵심보좌진인 민정수석이 이미 확고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VIP에게도 여러 차례 부정적 보고를 완료한 상태임

- 따라서 법원과 법무부간 합의도출 등 기존 반대 입장을 번복할 수 있는 합당한 명분과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민정수석을 부정적 입장을 전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한계 상황임. 아울러 상고법원안이 BH의 산적한 국정현안 중에서 VIP의 주요 정책사항으로 주목받기에는 한계가 있음

○ 법무부

- 법무부는 상고법원에 대해 종래 공식적 신중검토·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회.BH를 상대로 반대 논리를 제공하여 왔음.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국회 법률안 심사가 개시되자 확고한 반대입장을 표면화하기 시작했고, 특히 대법관 증원론에 대하여는 진보 세력의 최고법원 진출을 우려하는 문제인식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공식적으로 소수 증원론 주장도 개진하고 있음

- VIP의 대법원과 법무부간 실무협의 지시에 따라 9월 하순 상고법원 대안으로 대법원판사부안을 제안하고 의견제시를 요구함. 하지만 법무부는 민정수석으로부터 VIP의 실무협의 지시를 전달받으면서 VIP가 CJ와 면담자리에서 사실상 상고법원에 대해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고 면담분위기를 전달하였음. 그 결과 법무부는 협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법원이 제시한 상고법원 대안도 민주적 정당성흡결이라는 상고법원안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대법원판사에 의한 상고심판결을 대법관에 의한 상고심판결과 동일한 평면에서 평가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종전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음.

- 한편 대검은 상고법원문제가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내부조직 구성문제라는 이유로 공식적 입장 표명을 극도로 자제하는 등 법무부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하지만 일선 검찰청의 전반적 분위기는 상고법원 설치로 법원조직이 확대되는 반면에 검찰은 상응하는 반대급부 부재를 이유로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특히 최근 형사성공보수 금지 판결 이후 그러한 기류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함

○ 국회

- (전반적 분위기) : 여야 불문하고 20대 총선대비 선거구 획정 등 주요 정치현안에 관심 집중되고 있어 상고법원 자체에 대한 관심도 낮은 상황

- (여당) : 김진태 등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반대 기류가 팽배하고 있고, 최근에는 민○○ 대법관의 후임대법관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이 야당의 구성다양화 요구에 전향적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 비판적 분위기도 당 일각에 형성되었다고 함

- (야당) : 당내 계파간 갈등과 내분이 심화되고 있어 상고법원 자체에 대해 큰 관심이 없고 법사위에 일임하는 분위기임. 최근 한명숙 사건의 대법원판결 선고 이후 사법부가 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정치적 판결을 하였다는 오해와 함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고법원에 대한 강경한 반대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분위기 반전의 모멘텀이 없는 한 법무부와의 협상결과를 매개로 여당 설득에 성공해도 법률안 통과를 장

담할 수 없는 상황임. 강력한 법안 처리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야당의원들의 신뢰와 지지가 그다지 크지 않아 영향력과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ex. 지식협동조합과의 공동 정책심포지움에 여당 법사위원 뿐만 아니라 야당 법사위원도 전원이 불참)

- 현재 국회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결과 의원들에 대한 지속적 접촉·설득과 적극적 대안 제시를 통한 입법추진노력이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입법성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대응전략

○ 기본방향

- 국감이후 본격적 법률안논의 시작 후 당시 외부 상황의 변화에 조응한 최적의 다양한 전략 구사 필요

- 법무부와 원만한 협상 타결 시⇒ 야당에게는 법무부와의 협상 내용을 비공개하면서 법사위 1소위 대체하는 대안 조기 추진

다만 법사위 1소위 논의 개시되더라도, 現 1소위 구도 속에서 상고법원 법률안 가결 기대가 이한성 1소위 위원장의 (중략)

다음과 같은 타개책이 필요함

[타개책] 국회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법안심사 특위 구성

여야 각 2인, 영향력 있는 중진급 의원 중 상고법원안에 대한 이해도 높은 의원들로 1소위를 대체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에서의 밀도 있는 집중 심사를 통해 법률안 통과 추진

- 법무부와 입법협상 실패시에는 법사위 단계에서 상고법관 추천위원회 등 대안을 제시함이 없이 다음과 같은 로드맵에 따라 최후의 정면 돌파 전략 구사

○ 전반기 입법추진전략

- 언론을 통한 상고법원에 대한 긍정적 집중보도를 통한 우호적 분위기 확산 : [목표] 언론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확산 ⇨ 국민의 목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법사위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함, [활용 언론] 주요 메이저 언론 ⇨ 조선, 중앙, 동아 등(의원들이 한겨레, 경향신문보다 3대 주요 메이저 언론 기사 내용에 더 민감), [기사 방향 ①] 상고법원 설치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점 재확인(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으로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제도 개선 강조, 현재 상고심 지연 폐단이 두드러지는 구체적 사례, 국민 실생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소개), [기사 방향 ②] 올해 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각인(17대부터 이어온 상고심제도 개선 논의 경과 심층 소개, 19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향후 개선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점 설명), [기사 방향 ③] 법사위 논의 지지부진에 따른 책임론 부각(작년 12월 발의 이후 지금까지의 법안 심사 경과, 공론화 과정, 찬반 의견의 허와 실 등 상세 소개, 결국, 법사위 소수 의원들의 독단과 오해로 인해 제도 개선 좌초될 상황이라는 위기의식 확산 ⇨ 해당 의원들의 심리적 부담감 가중)

- (BH, VIP우회설득전략) : 민정수석을 설득하여 정면 돌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가 심정적으로 반발할 수 없고 VIP가 절대 신임하는 인사¹⁾를 동원해 VIP를 우회적으로 설득함. 설득논리→ 대안이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이 내포하고 있는 위헌 시비 등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했고, 현행 헌법하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므로 큰 틀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정무적 결단을 내려도 무방하다고 건의

- (법무부) : 현단계에서 법무부의 긍정적 방향으로의 유연한 태도 변화가 기대 불가능함을 전제로 대응전략 수립하되, 법무부 수뇌부, 특히 상고법원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김○○ 차관을 상대로 추가적 설득노력을 지속할 필요. 아울러 법무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최대 현안과 관심사를 분석하여 Deal 가능한 유력한 카드 제시하고 법무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

- (야당) : 이상민위원장은 기존 지지입장의 확고한 유지 되도록 지속적 접촉과 정서적 접근으로 인적 유대관계 강화. 전해철의원은 야당간사이자 서기호 의원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설득대상이나 자기 주관과 고집이 강하고 한명숙 사건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성급한 직접 접촉시도는 역효과 발생 우려되므로 일정기간 냉각기 필요. 전병헌 의원을 통한 우회적 설득방안 추진→ 전병헌 의원은 본인이 전해철 의원 설득의 책임자로 자인하고 있고, 상고법원에 대해 전폭적 지지 의사 밝히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정치인답지 않은 우직하고 솔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추진력도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전해철 의원 설득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여당) :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김진태 등 법사위 내 검찰 출신위원들을 법무부와 BH의 종속변수이므로 이들을 돌파하려면 직접 설득시도보다 법무부와의 협상결과 관망후에 이를 지렛대로 하여 의원별 접촉 및 설득을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BH의 의원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법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밖에 없음. VIP 측근

1) 국가원로로서 폭넓은 식견과 합리적 판단력을 지니고 있고 VIP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이○○와 비록 현직에서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국정 전반에 관해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김기춘 등

으로서 여당 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정현, 윤상현 의원에게 지원 사격 요청 필요

- (대법원 국정감사 활용) :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예상되는 의원들의 상고법원 관련 질의에 대한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상고법원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필요(상고법원 도입의 진정성, 불가피성, 시급성 논리 유지, 특히 대법원장님 말씀을 통해서는 '상고법원이 법원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법원의 진정성을 꼭 알아 달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법사위원들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도)

○ 최후의 입법추진전략

- 긴급 상황을 극복하는 非常의 타개 방안으로 상고법원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는 방안 모색 ⇨ 위원장과 찬성위원 설득을 통한 의사일정 변경 방식으로 전체회의 상정 논의 추진

○ 입법추진실패 후 출구전략

- 대외적 전략

① 민사사건 상고기각결정제도 입법 재추진 ㉠(재추진필요성) : 민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상고사건(약 30%)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나머지 70% 사건의 상고이유 당부를 더욱 충실히 심리할 필요 있음 ⇨ 심리여건 악화 및 적체현상 해소 필요성
㉡(주요골자) : 상고장과 상고이유만으로도 민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기에 결정으로써 종결하여 당사자의 불필요한 비용 투입을 방지하고, 상고심의 정상적 심리여건 회복

② 심리불속행제도의 활용 강화 ㉠ 현재 약 60%인 심리불속행 비율을 80%로 제고하여 사실상 상고허가제와 사실상 동일하게 운용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 ㉡(유의사항) :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활용 강화에 대해 종전과 달리 위헌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태도 변화 여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③ 소수증원론에 대한 방어논리 개발 ㉠(개발 필요성) : 대부분 의원들이 상고심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따라서 입법추진이 좌절될 경우 현재 법무부관계자가 공청회 등에서 주장하는 대법관 소수 증원론이 대법원 의도와는 달리 과거 헌정사에서 이미 시행한 경험있고, 일선법원에서도 그다지 반대하는 기류가 아니므로 법원외부의 전폭적 지지세를 얻어 입법추진 탄력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소수 증원론은 사법부 입장에서 수용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그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방어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방어논리) : 대법관증원과 상고법관 증원의 경제

적 비용 대비, 대법관 증원론의 본질적 한계 지적[소수증원은 현재 상고사건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비추어 근본적 해결 불가능, 다수증원은 대법원의 본래적 기능 수행 불가능]

- 대내적 전략

①(필요성)⇒ ㉠최근 일선 법관들은 올해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오해가 형성되어 있고, 상고법원 총력 추진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 ㉡따라서 상고법원 입법추진실패가 법원 내부적으로 CJ의 리더십 약화와 사실심 충실화, 인사제도 등 주요 사법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 불신풍조 확산을 초래하여 법원 조직 전체의 내부적 동요와 결속력 약화의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음

②(사전 대책 준비)⇒ ㉠상고법원 입법실패에 대한 일선법관들의 전반적 여론 현황을 점검한 후 근거없는 오해와 정서적 반감을 불식시키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 필요.

㉡ 사법부 고위 인사 등의 성명 발표 여부 검토⇒ 상고법원 입법추진 실패가 법원의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관 사회의 심리적 동요를 다독이고 내부적 안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차 대응] 공보관 명의로 브리핑

▶ 브리핑 요지[상고법원 입법추진실패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유감 표명]

㉣ [필요한 경우 2차 대응] 긴급실국장회의 후 법원행정처장 명의 또는 대법관 행정회의 후 대법원장 명의(공보관 발표)

▶ 현행 법령 하에서 대법원의 본래적 기능 정상화와 국민의 신속하고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 표명

㉤ 긴급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 여부 검토 ⇨ 소집 O VS 소집 X

▶ 긴급 전국 법원장회의의 소집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외부에 알리기 좋은 계기이지만,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사법부가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외부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소집의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음

㉥ 순회 간담회 개최

▶ 최근 일선 법원의 긍정적 평가와 큰 호응을 이끌어 낸 순회간담회 방식으로 입법추진 경과의 이면에 대한 상세 설명(작년 12월 발의 이후 지금까지의 법안 심사 경

과, 공론화 과정, 찬반 의견 등)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특히 CJ 임기 하반기에 들어선 현재 행정처와 일선 법원과의 긴밀한 소통 창구와 스킨십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순회 간담회를 통해 내부여론 수습을 도모할 필요

▶ 이러한 순회 간담회의 추가실시는 먼저 법원장 대상으로 실시함. 다만 법원내부의 여론무마용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향후 주기적 순회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하여 일선법원과 행정처 사이의 지속적 소통과 정보공유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할 필요

- 소수증원론 대응(요약) -

1. 소수증원론의 배경 검토

가. 인구노령화로 사건 수 감소

[주장]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인구노령화가 진행될수록 1심 접수 사건 수 줄고, 이에 따라 상고사건 수는 정체되거나 줄어든 것임

- 일본 민사/행정 1심사건 및 상고사건 감소추세로 보기 어려움(형사 감소)
- 우리나라는 1심사건 및 상고사건이 계속 증가추세임(2014년 4만건 초과)
- 사건이 더 늘지 않고 정체된다 해도 현재 사건부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나. 대법관 사건부담은 부풀려져 있음

[주장] 심불기각, 상고기각결정 및 소.상고취하로 절반이 간이하게 처리됨
다수의 재판연구관 있어 실제 대법관 부담은 크지 않음

- 심불기각, 상고기각결정 등 사건도 대법관이 전부 사건을 검토함
- 심불 등 제외하더라도 2만건 처리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많은 수임
 - 2005년 사개추위 당시 2만건이었고, 심불 등 사건이 포함된 수치였음
 - 미국 80/총8,000건, 일본 100/총8,000건, 독일 600/총7,000건 판결 선고
- 재판연구관은 보조하는데 불과, 대법관이 모든 사건을 검토.합의하여 결정

다. 궁극적으로 하급심 충실화로 해결할 문제

[주장] 우선 대법관 소수증원하여 현상황을 일부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하급심 충실화로 해결할 문제임

- 하급심 충실화가 바로 상고사건 수 감소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님
 - 구술심리, 공판중심, 1심집중 등 계속 하급심 충실화했으나 상고사건 증가
- 4만건에 이른 상고사건을 하급심 충실화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함

2. 소수증원의 효과 → 무의미

[주장] 현재보다 20~30% 사건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상고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상고심의 문제를 '신속'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 임시방편 → 3, 4, 6명 늘려도 2008~2010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일뿐

-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실, 신속 및 전합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소수증원은 이와 같은 요구를 하나도 충족시킬 수 없고, 오히려 대법원의 기능을 더욱 약화시킴

- 대법관 사건 부담 여전함 → 심불폐지, 충실 심리 불가
- 소부 증가, 전합 어려워 심도 있는 논의에 차질 → 신속 심리도 어려움
- 대법관 사건 부담 여전함, 전합 구성원 수 증가 → 전합 활성화 불가
- 소부 증가로 판결 모순 가능성 높아짐 → 법령해석통일 기능 더욱 약화

3. 역사적 접근

[주장] 과거 우리나라는 대법원장 포함하여 대법관 수를 16명까지 증원하여 대법원을 구성한 적 있음. 소수증원은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한 바 있음

- 3공화국 헌법은 대법관 수를 15인(대법원장 포함 16인)으로 증원
- 이는 제정 헌법 이래 헌법위원회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던 위헌법률심판·정당해산심판을 대법원의 권한으로 추가시켰기 때문임 → 대법원의 권한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사건 수 증가 때문에 대법관의 수를 늘린 것 아님

4. 예산문제

- 대법관 1인은 상고법원 판사 1인보다 3배의 비용 소요
 - 대법관 4인 증원 비용 → 상고법원 판사 12명(4인부 3개) 즉 현재의 대법원과 같은 규모의 상고법원을 신설할 수 있음

5. 정치적 접근(야당용)

- 대법관증원 → 정권의 사법부에 대한 지배력 확대 시도
 - 증원된 대법관을 임명하는 정권의 영향력 확대
 - 차기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이 과반수 차지하는 시기 연기됨
 -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법관증원 시도 무산 사례



소수증원론 대응

2015. 10. 10.

사법정책실

1. 소수증원론의 배경 주장

가. 인구노령화로 사건 수 감소

-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인구노령화가 진행될수록 1심 접수 사건 수 줄고, 이에 따라 상고사건 수는 정체되거나 줄어든 것임

나. 대법관 사건부담은 부풀려져 있음

- 심불기각, 상고기각결정 및 소.상고취하로 절반이 간이하게 처리됨
- 다수의 재판연구관 있어 실제 대법관 부담은 크지 않음

다. 궁극적으로 하급심 충실화로 해결할 문제임

- 우선 대법관 소수증원하여 현상황을 일부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하급심 충실화로 해결할 문제임

[대응]

가. 사건 수

- 일본 민사, 행정 1심사건 및 상고사건은 감소추세라고 보기 어려움
- 우리나라는 1심 사건 및 상고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사건 수 더 늘지 않고 정체된다고 해도 현재 사건 부담은 해결되지 않음

나. 대법관의 사건 부담

- 심불기각, 상고기각결정 등 사건도 대법관이 전부 사건을 검토함
- 심불 등 제외하더라도 2만건 처리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많은 수임
- 2005년 사개추위 당시 2만건이었고, 심불 등 사건이 포함된 수치였음
- 미국 80/총8,000건, 일본 100/총8,000건, 독일 600/총7,000건 판결 선고
- 재판연구관은 보조하는데 불과, 대법관이 모든 사건을 검토.합의하여 결정

다. 하급심 충실화

- 하급심 충실화가 바로 상고사건 수 감소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님
- 구술심리, 공판중심, 1심집중 등 충실화되었으나 상고사건은 증가
- 4만건에 이른 상고사건을 하급심 충실화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함



가. 인구노령화로 인한 사건 수 감소

1) 일본 1심 및 상고사건 수

년도	인구수 ¹⁾ (만명)	노동 인구수	1심 본안사건 수				상고사건 합계
			민사	형사	행정	합계	
2009	12757	6617	893,735	132,792	4,165	1,476,743	7,352
2010	12739	6590	808,188	125,523	4,382	827,517	7,715
2011			719,006	116,443	4,607	719,006	8,002
2012	12757	6555	564,621	110,985	5,080	583,933	8,218
2013	12731	6577	481,136	104,000	4,773	500,444	7,972
2014			461,557	103,654	4,700	461,557	7,414

■ 일본 인구수

- 2000년대 들어 큰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으며, 노동인구수는 2000년대 초 6,700만에서 2013년 6,500만으로 200만 정도 줄어들었음

■ 1심 사건 수

- 형사사건 → 계속 감소 추세 뚜렷함
- 민사사건은 2009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 이는 과불금 사건²⁾이 2006년 이후 증가하여 2009년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 감소로 돌아섰기 때문임. 과불금 사건을 제외하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재판소 1심 사건은 거의 변화가 없고, 간이재판소 사건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 행정사건은 2005년 행정소송법 개정 이후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확대 경향, 2011년 선거구획정에 관한 위헌 판결 이후 선거소송 증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정점을 이루고 이후 약간 감소하여 4,700여건으로 정체된 상태임

■ 상고사건 수

-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과 2014년에는 소폭 감소하였음

1) 2011년과 2014년에는 일부 '현' 인구가 누락된 정보만 제공되어 있어 총 인구수 합산 불가능

2) 이자제한법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 초과 지급 이자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는 2006년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과불금 소송이 대폭 증가하였음



■ 종합

- 형사사건 수의 꾸준한 감소세로 전체 1심 사건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다만, 민사·행정사건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음
- 상고사건은 최근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과 불금사건의 영향이 상고사건에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추후 확인 필요함
- 일본의 1심 사건 수 및 상고사건 수가 정체 내지 감소세에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움. 그러나 이것이 일본 경제성장의 침체 내지 둔화로 인한 것인지, 인구수 감소로 인한 것인지 원인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 없음

■ 대응논리

- 일본의 사건 수 정체 내지 감소세가 인구 수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 없고,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인구 수 정체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기도 하였음
- 사건 수는 인구 수 못지 않게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나 법률개정, 위헌결정 등 사회적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건 수 정체나 감소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움

2) 우리나라 1심 및 상고사건 수

연 도	1심 사건 수	상고사건 수
2003년	1,427,445	19,295
2004년	1,487,673	20,432
2005년	1,396,221	22,587
2006년	1,577,919	22,946
2007년	1,530,165	26,392
2008년	1,601,807	28,040
2009년	1,434,530	32,361
2010년	1,315,410	36,418



2011년	1,336,338	37,266
2012년	1,409,638	35,776
2013년	1,436,155	36,110
2014년	1,475,044	37,652

■ 1심 사건 수

- 2006년부터 희망모아 사건의 대량 접수 시작되어 2008년 정점을 이루고 2009년부터 희망모아 사건 접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 그대로 반영되었음
 ➔ 희망모아 사건을 제외하면 1심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상고사건 수

- 2009년 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 위헌결정 이후 2009년과 2010년에 형사사건이 약 4,000건 가량씩 대폭 증가하였음
- 이로 인해 2011년 정점을 찍은 사건 수가 2013년까지 줄어들다가 2014년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2015년 9월말 기준 2014년보다 12% 증가하여 2015년에는 다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임

■ 종합

- 우리나라는 1심 사건과 상고심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인구수와 관계 없이 정체나 감소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워 당분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증가세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심 사건 접수 추세로 보아 상고사건이 당분간 감소세를 나타낼 가능성 없음. 최대한 보수적으로 상고사건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현상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연간 40,000건 접수 사건 수는 한계치에 이른 상황임

	기준 상고사건 수	1인당 사건 수
17대 사개추위	20,000건(2004년)	1,500건
18대 사개특위	32,000건(2009년)	2,500건
19대 상고법원	38,000건(2014년)	3,000건



- 2005년 사개추위에서 상고제도 개선안으로 고법상고부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무렵에 기준이 되었던 2004년 상고사건 수는 20,000건으로 현재 상고사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음
- 2010년 18대 국회 사개특위에서 상고제도 개선을 논의할 무렵에 기준이 되었던 2009년 상고사건 수는 32,000건으로 현재의 80%에 불과하였음
- 현재보다 절반 수준이었던 당시에도 상고사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구체적 법률안이 논의되었는데, 그보다 2배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사건 수가 증가할 전망이 약하다고 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없거나 감소되는 것은 아님

나. 대법관의 사건 부담

사건 (2014년)	접수	①심불기각/ 형사상고기각결정	②소취하/상고취하	①+②
민사	13,016	7,210	380	7,590
가사	566	436	21	457
행정	2,954	1,832	74	1,906
특허	288	202	17	219
형사	20,773	8,218	1,755	9,973
합계	37,597	17,898	2,247	20,145

■ 심불 등 사건(20,000건)도 사건 검토 수준은 판결사건과 큰 차이 없음

- 심불, 상고기각결정 → 다른 기각판결 사건과 마찬가지로 기록검토·합의 함
- 소상고취하 → 기록 검토 이후 취하서 접수되는 경우가 오히려 다수임

■ 상고 본안사건 외에도 추가 사건 부담(10,000건) 있음

- 특별항고 500건
- 재항고 8,000건
- 기타 신청사건 2,000건



▣ 재판연구관

- 대법관 업무를 보조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침
- 심불기각, 상고기각결정 포함 모든 결론은 대법관이 사건 검토 및 소부 합의를 거쳐 내리는 것임

▣ 심불, 상고기각결정 제외하더라도 처리할 사건 수는 20,000건 이상임

- 사개추위 ‘고법 상고부’ 논의 당시 사건 부담이 20,000건이었고, 여기에는 심불기각 등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상고심의 충실한 재판이 어렵다고 하여 제도 개선이 논의된 것임
- 현재 사건 수 자체로 충실한 상고심 재판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외국의 상고사건 처리 현황과 비교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BGH)	
접수사건	38,000		8,000		8,000		7,000	
이유판결	18,000 (47%)		80 (1%)		100 (1.2%)		600 (8.5%)	
대법관수	12		9		15		129	
대법관 1인당	접수	3,150	접수	900	접수	530	접수	55
	판결	1,500	판결	9	판결	7	판결	5
연구관수	118		36		40		50	
연구관 1인당	접수	320	접수	25	접수	200	접수	140
	판결	150	판결	2	판결	3	판결	12

-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그 중 판결로 처리하는 사건 수는 100건도 안 되거나, 총 접수 사건의 10%에도 미치지 못함
- 재판연구관 수도 접수사건 또는 처리 사건에 대비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연구관 수가 적은 편임

다. 하급심 강화

1) 하급심 강화와 상고사건의 상관관계



▣ 우리나라 상고사건 계속 증가

- 근래 공판중심, 구술심리, 전문성, 1심 집중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과거 재판에 비하여 법정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하급심 강화가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상고사건은 이와 상관없이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하급심 강화가 바로 상고사건의 감소의 결과를 낳는다고는 보기 어려움

▣ 외국은 하급심 강화에도 불구하고 상고허가제 유지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 사법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은 상고허가제를 유지하고 있음
- 이들 국가에서 하급심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제한하는 상고허가제 유지 → 하급심 강화로 인해 상고사건이 유의미하게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줌

2) 상고제도 개선의 시급성과 하급심 강화

▣ 1960년대부터 계속된 국민적 요구

- 우리나라는 1959년 이원적 구성을 도입하였다가 2년만에 폐지한 이래 다양한 상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음
- 1994년 심리불속행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제도 개선 요구는 계속되어 2005년 고법상고부 법안이 발의되어 입법 논의를 거쳤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후 10년간 사건이 2배 증가 →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요구 점차 강화
- 하급심 강화만으로 직접 상고사건 감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은 앞서 보았고, 일부 효과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
- 연간 40,000건의 상고사건이 접수되는 이상 하급심 강화만으로 상고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함

▣ 상고제도 개선과 하급심 강화는 병행 추진 필요



- 심급제를 유지하는 이상 하급심과 상고심을 균형있게 발전하여 전체 심급 제도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것임
- 하급심 강화만으로 상고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급심 강화와 상고제도 개선은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세계 각국 역시 상고제도 개선과 하급심 강화는 함께 추진하여 왔음

2. 소수증원의 효과 ➔ 무의미

[주장] 현재보다 20~30% 사건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상고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상고심의 문제를 '신속'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대응] 현재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실, 신속 및 전합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소수증원은 이와 같은 요구를 하나도 **충족시킬 수 없고, 오히려 대법원의 기능을 더욱 약화시킴**

- 임시방편 ➔ 3, 4, 6명 늘려도 2008~2010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일뿐
- 대법관 사건 부담 여전함 ➔ 심불폐지, 충실 심리 불가
- 소부 증가, 전합 어려워 심도 있는 논의에 차질 ➔ 신속 심리도 어려움
- 대법관 사건 부담 여전함, 전합 구성원 수 증가 ➔ 전합 활성화 불가
- 소부 증가로 판결 모순 가능성 높아짐 ➔ 법령해석통일 기능 더욱 약화

가. 임시방편에 불과함

	현재 : 12명	15명(+3)	16명(+4)	18명(+6)
1인당 사건수 (42,000건 기준)	3,500	2,800	2,600	2,300
업무량 감축		20% 감축	25% 감축	35% 감축
과거 유사수준		2010년 수준	2009년 수준	2008년 수준

- 3명, 4명, 6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사건 부담은 2008~2010년 수준에 머무를 것임 ➔ 상고사건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4-5년 후에는 또다시 현재와 같아질 것임이고, 추가적 제도 개선이 문제될 것임



나. 현재의 상고심 문제를 전혀 개선할 수 없음

1) 심리불속행제 폐지 불가 → 국민 요구 충족 불가

- 현재 상고심의 심리 불충분에 대한 가장 큰 국민적 비판의 대상은 심리불속행제도에 있음
- 소수증원으로는 심리불속행제도 폐지할 수 없으므로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 방향이라고 보기 어려움

2) 보다 충실한 상고심 심리 불가

- 현재보다 20-30%의 사건 부담이 줄어 대법관 1인당 사건 수가 2,500건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여 상고심 심리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만큼 충실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움
- 2005년 사개추위 논의 당시 1인당 사건 수는 1,500건 정도로 현재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국민이 만족하는 충실한 심리를 제공하지 못하여 상고제도 개선이 논의되었음

3) 보다 신속한 심리도 어려움

- 현재 심리불속행이나 상고기각결정 등으로 처리되는 사건은 현재보다 처리기간이 짧아질 수는 있음 → 그러나, 심리불속행이나 상고기각결정 사건은 원래부터 처리 지연이 문제되는 사건이 아님
- 심리불속행이나 상고기각결정 이외 기각 또는 파기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대법관 소부에서 여러 차례 합의가 진행되거나 추가적 검토, 논의 등 심층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임 → 대법관 수가 늘어나는 경우 아래에서 보듯이 전원합의체 심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소부 간 판결 모순 가능성 등으로 심층 심리에 시간이 더 길게 소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결국 심리불속행이나 상고기각결정 이외 사건에서 현재 보다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움



4) 전원합의체 활성화 어려움

▣ 사건 부담으로 인해 전합 어려움 마찬가지

- 대법관은 여전히 2,500건 내외의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검토·논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

▣ 전합 구성원 수 증가로 인한 토론 어려움

- 전원합의체 구성원 수가 16명·17명 등으로 늘어나게 되면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다수의견을 모으거나 의미 있는 소수의견을 형성하기 어려움
- 오히려 대법관의 수를 줄여 더욱 실질적이고 강화된 전원합의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학계 등의 견해임

▣ 외국 사례 → 15명 이상은 하나의 합의체에서 심판하기 어려움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총 16명 → 하나의 합의체를 이루지 못하고, 8명씩 2개부로 나누어 재판하고 있음
- [독일 연방일반법원의 대합의부] 민사대합의부는 13명(법원장+12개부의 대표 1명씩), 형사대합의부는 11명(법원장+5개부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되는데 그나마 없거나 연간 1-2건에 그치고 있음. 민사·형사 대합의부를 합친 연합부는 거의 열리지 않음
-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15명의 대법정 + 5명씩 소법정 → 대법정 사건은 연간 1-2건에 불과하고, 주로 소법정 재판을 하고 있음

5) 대법원 다양화 촉진 어려움

- 연간 처리 사건 수가 3,000건에서 2,500건 내외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과중한 수치이므로 사건처리능력이 대법관 자질 중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음
- 사건처리 부담을 줄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폭넓게 반영하는 전원합의체 심리를 실질화하기 어렵다면, 대법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다양화 촉진은 국민이 원하는 만큼 진척되기 어려울 것임



다. 상고심 문제 더욱 악화

▣ 소부가 늘어나 모순 판결 증가 우려

- 대법관이 소수라도 증원되는 경우 소부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음
- 1개가 더 늘더라도 소부 사이 판결이 모순되거나, 법령해석통일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짐 →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령 해석을 통일해야 하는 헌법적 역할에 반하게 됨
- ※ 소부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부 구성원의 수를 4명→5명으로 증원하는 방식이 주장되는 경우 : 소부 합의가 어렵게 되어 소부 사건 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지연되거나 전원합의체 회부가 늘어나게 되고, 전원합의체 역시 구성원 수가 늘어나서 실질적 합의가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 있음

3. 역사적 접근

[주장] 과거 우리나라는 대법원장 포함하여 대법관 수를 16명까지 증원하여 대법원을 구성한 적 있음. 소수증원은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한 바 있음

[대응] 대법관 수를 15인(대법원장 포함 16인)으로 증원한 것은 제정 헌법 이래 헌법위원회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던 위헌법률심판 . 정당해산심판을 대법원의 권한으로 추가시켰기 때문임 → 대법원의 권한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사건 수 증가 때문에 대법관의 수를 늘린 것 아님

1) 대법관의 수 변천

▣ 헌법·법률 규정

헌법	제정	1960.6.	1962.12.~		1980.10.	1987.10.		
	없음	없음	16인이하		없음	없음		
헌법개정법	제정	1961.9.	1963.12.	1969.1.	1981.1.	1987.12.	2005.12.	2007.12.
	9명이내	대법원장 포함 9인	대법원장 외 12인	대법원장 외 15인	대법원장 외 12인	대법원장 포함 14	대법원장 포함 13	대법원장 포함 14



- 1969. 1. 20.부터 1981. 1. 28.까지 12년간 규정상 대법원장 외 15인이었음

■ 실제 대법관 수

기간	대법원판사 수
1969. 01. 01. ~ 1969. 08. 26.	12
1969. 09. 01. ~ 1973. 03. 30.	15
1973. 04. 02. ~ 1975. 09. 30.	12
1975. 10. 01. ~ 1976. 09. 27.	15
1976. 09. 28. ~ 1976. 11. 07.	14
1976. 11. 08. ~ 1977. 01. 03.	13
1977. 01. 04. ~ 1979. 03. 21.	15
1979. 03. 22. ~ 1979. 04. 15.	14
1979. 04. 16. ~ 1979. 09. 20.	15
1979. 09. 21. ~ 1980. 04. 29.	14
1980. 04. 30. ~ 1980. 5. 31.	13
1980. 06. 01. ~ 1980. 08. 08.	15
1980. 08. 09. ~ 1980. 09. 14.	10
1980. 09. 15. ~ 1980. 12. 31.	12

- 12년 동안 실제 15명으로 운영된 것은 7년 5개월 정도이었음

2) 대법원 권한 확대에 따른 증원

- 1962. 12. 개헌 : ① 대법관의 수를 헌법에 최초로 명시, ② 대법관의 수를 '9인 → 16인 이하'로 증원, ③ 종래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가 담당하던 위헌법률심판·정당해산심판을 대법원의 권한으로 추가하였음

-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헌법 규정

헌법	제정	1960. 6.	1962. 12. (63. 12. 시행)	1972. 12.	1987. 10.
	헌법위원회 (‘법원’ 장)	헌법재판소 (별도의 장)	대법원	헌법위원회 (별도의 장)	헌법재판소



- 1960. 6. 개헌으로 헌법재판소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실제로는 설립되지 못한 채 1962년 개헌으로 관련 규정이 폐지되었음
-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한 후 1970. 8.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률, 명령, 규칙의 위헌을 인정하는 때에는 종래 2/3이상 합의체에서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출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정족수 상향 조정 → 1971. 8. 22. 국가배상법 위헌 판결(전합)이 선고되자, 1972년 개헌 당시 헌법위원회를 별도 설치함
 - 위 위헌 판결은 대법원장 포함 16명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되었는데, 국가배상법 위헌 부분은 다수의견 9명, 반대의견 7명이었고, 법원조직법 위헌 부분은 다수의견 11명, 반대의견 5명이었음(→ 16명 전원합의체 심리 가능하다는 반대측 논거로 사용될 가능성 있음)
- 1972년 이후 1987년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도입될 때까지 헌법위원회는 위헌제청이 단 1건도 없어 유명무실하였음
- ▣ ※ 대법관의 수를 증원함으로써 다수의견 형성을 어렵게 하여 위헌법률심판 등의 권한을 쉽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정치적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4. 예산 문제

[대응] 대법관 1인은 상고법원 판사 1인보다 3배의 비용 소요
- 대법관 4인 증원 비용 → 상고법원 판사 12명(4인부 3개) 즉 현재의 대법원과 같은 규모의 상고법원을 신설할 수 있음

▣ 대법관증원 비용은 3배

- 인건비, 사무실 비품 등 자산취득비, 차량 임차료·유지비, 운영경비 및 필요 사무실 면적 등을 고려하면 대법관 1인에 드는 비용은 상고법원 판사 1인에 드는 비용의 3배가 소요됨

▣ 대법관 4인 증원 비용으로 상고법원 판사 12인 가능

- 현재의 대법원과 같은 규모의 법원(상고법원)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음



- 대법관 4인 증원으로는 심불폐지, 충실·신속한 심리와 전원합의체 활성화 어렵지만, 상고법원 판사는 12인만 있더라도 이와 같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음

5. 정치적 접근(야당용)

[대응] 대법관증원 → 정권의 사법부에 대한 지배력 확대 시도

- 증원된 대법관을 임명하는 정권의 영향력 확대
- 차기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이 과반수 차지하는 시기 연기됨
-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법관증원 시도 무산 사례

▣ 대법관증원 → 정권의 사법부 지배력 확대 시도

- 1962년 개헌 제3공화국 헌법 → 대법관 수를 16인 이하로 확대 +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이 헌법에 최초 도입)
- 합법적·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정권이 대법관의 수를 늘리고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법적 절차에 의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노림

▣ 증원된 대법관 → 입법 당시 BH의 임명권 확대

- 증원된 4인을 현 BH가 전부 임명하는 경우(2016년 임명 가정), 차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2018년부터 시작된 임기를 4년이나 넘긴 2022년이 되어야 차기 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과반수를 넘게 됨

대법관	임기만료	임명 정권
이○○	2016. 9. 2.	現
이○○	2017. 2. 27.	現
박○○	2017. 6. 1.	現
2017. 9. CJ 취임 / 2017. 12. 대선		
김○○	2018. 1. 2.	現
박○○	2018. 1. 2.	現
2018. 2. 次期 BH 취임		
고○○	2018. 8. 12.	次期
김○○	2018. 8. 12.	次期



증원 대법관은
現정권이
2016년 임명

김○	2018. 8. 12.	次期
김○○	2018. 11. 1.	次期
조○○	2020. 3. 3.	次期
권○○	2020. 9. 11.	次期
박○○	2021. 5. 7.	次期
이○○	2021. 9. 15.	次期
증원A	2022	次期
증원B	2022	次期
증원C	2022	次期
증원D	2022	次期

← 차기 정권 과반수(9/17)

▣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court packing plan' 실패 사례

-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이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자, 뉴딜정책에 찬성하는 대법관을 임명하려는 목적으로 연방대법관 수를 15명까지 증원하려는 법안 추진 → 국민과 의원, 심지어 같은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도 사법부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 결국 무산되었음



상고법원 추진 연락처 방안

2015. 11.

법원행정처

1. 검토 배경

- **금년 중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위해 모든 사법역량 집중하였으나, 입법 성사가 쉽지 않은 중대한 기로에 봉착**

 - 법률안 통과에 키를 쥐고 있는 BH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환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법무부 역시 협상에 미온적 태도 보이면서 사실상 확고한 반대 입장 고수 ⇨ 비공식적으로 대법관 소수 증원론 개진
 - 여당은 검찰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기류 형성, 야당은 한명숙 사건 선고 이후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 극적인 분위기 반전의 모멘텀이 없는 한, 법률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 **입법추진 실패 시 사법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문제 상황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상고법원 법률안이 현재 사법부 최대의 역점사업임은 너무나 공공연한 사실임
 - 따라서 입법추진이 실패하면 ① 과거 17대 국회의 경험에 비추어 또다시 10년 가까이 상고심 구조개혁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고, ② 대외적으로 사법부의 위상이 추락하고, 법원 내부적으로도 CJ의 리더십 약화라는 최악의 위기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입법추진 환경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입법추진 실패에 대비한 연락처 방안 강구 필요**

 - 입법추진 좌절 시 법원 내외부에 불어올 후폭풍과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전략(출구전략) 수립 필요



2. 대외적 대응 전략

가. 기본 방향

- 입법추진 난항이라는 외부 상황 변화에 조용한 최적의 대응 전략 구사
- ① 대외 관계에서 사법부 위상 유지 + ② 부차적으로나마 상고심 제도 개선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나. 상고법원안 입법 추진 전략

- 공식적으로는 기존의 추진 노력 지속
 - 현 단계에서 입법추진 실패 공인하거나 사실상 중단하는 것은 즉각적인 사법부의 대외적 위상 및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음
 - 국회, 법무부 등을 설득할 수 없는 미완의 정책 과제를 2년 가까이 추진하면서 사법역량 낭비했다는 비판에 직면
 - 최근 여론의 관심 받고 있는 상고법원안에 대한 여러 대안들 중심으로 계속적인 설득 및 공론화 작업 유지 필요
 - 특히, 언론의 상고법원 대안 등에 대한 긍정적 집중보도 활용 필요
 - ⇒ 입법추진 동력 유지 + 국회에서의 부정적 분위기 확산 차단
- 다만, 입법추진 노력의 강도 및 수위는 조절
 - 법사위원들에 대한 접촉 빈도 및 강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
 - 법사위원들에게 행정처의 변화된 모습 전달하여, 다소간의 긴장 관계 조성 필요한 시점 ⇒ 후술하는 타 법률안 입법 추진에 유리한 사전 정치 작업이 될 수도 있음
 - 지금까지 입법 성사를 위해 감수해 왔던 저자세 스탠스 이미지 극복도 필요
 - 향후 정치일정 진행됨에 따라 상고법원안 통과 불투명하다는 전망



은 유폐될 수밖에 없는 상황

- 정기국회 종료 시점 다가오면서, 본격적 총선 국면 돌입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법안 처리에 대한 열의 및 관심도 갈수록 저하될 것
- 결국, 비관적 외부 입법환경의 고착에 따라 불가피한 입법추진 포기의 외관이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형성되도록 해야 함

다. 상고심제도 개선을 위한 차선의 보완책 추진 전략

1) 기본 방향

- ▣ 그 동안 상고법원안 입법 성사를 위해 **보류해 두었던 방안 등 재추진**
- ▣ **상고심제도 개선의 시급성과 절박성 호소** ⇨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강력히 요청
 - 심리불속행기각제도, 형사사건에서 상고기각결정, 상고이유의 엄격한 심사 등 현 제도의 적정한 운영으로 충분하다는 법무부 등 논리에 대한 반대 논리 치밀하게 준비
- ▣ **12월 임시국회 내 입법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 투입**

2) 민사사건 상고기각결정제도 도입 재추진

- ▣ **도입 재추진 필요성**
 - 민사소송법 제429조를 개정하여 제423조 및 제42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상고사건(약 30%)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나머지 70% 사건의 상고이유 당부를 더욱 충실히 심리할 필요 있음 ⇨ 심리여건 악화 및 적체현상 해소에 기여
- ▣ **주요 내용**
 - 상고장과 상고이유만으로도 민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 없



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기에 결정으로써 종결하여 당사자의 불필요한 비용 투입을 방지하고, 상고심의 정상적 심리여건 회복

■ 입법 추진 현황

- 법률안 발의 이후 국회에서의 논의 상황

- ▶ 2014. 3. 15. 이춘석 의원 등 10인 법률안 발의
- ▶ 2014. 4. 15. 전체회의 상정 및 1소위 회부
- ▶ 2014. 4. 17. 1소위 상정 및 가결

- 변호사단체 등의 반발로 입법 추진 보류 상태

- 2014. 4. 15. 대한변협에서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국민의 대법원에서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성명서 발표
- 상고법원안 추진에 악영향 미칠 것 등을 우려하여,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등 후속 입법 추진을 미뤄 옴

■ 향후 입법추진 전략

- 입법추진 재가동

- 사실상 상고법원안 추진이 어려워짐으로써 입법 추진을 보류할 이유 사라짐 ⇒ 상고법원안에 대한 수정안 입법 시도와 무관하게 별도로 추진
- 대한변협 등과의 갈등 형성도 크게 고려할 변수 못됨

- 대한변협과의 대립 구도는 이미 고착화된 상태이고, 차제에 변호사단체에 대한 일정 수위 내에서의 강공 태세 구축도 고려해야 할 상황임

- 입법추진 시기 및 방식

- 11. 30. 또는 그 이후 12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추진
- 1소위 통과된 법률안을 전체회의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은 일종의 요식 절차에 불과
- 상고법원안 논의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



는 법률안이라는 점 부각시켜 전체회의 상정 및 의결 적극 추진

- 안전 상정 권한 가진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 양당 간사들 접촉 및 설득 필요

3)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추진

■ 법사위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개요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 추진 필요성

- 정식재판청구 남용 방지하고,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 도모 ⇨ 경미한 약식명령 사건이 상고심까지 올라오는 것 방지하여 상고사건 적체 문제 해소
- 사법부 내부적으로는 정식재판청구사건 처리에 애로 사항 토로하는 담당 법관들의 사기 진작, 정식재판청구사건 감소에 따른 타 형사본안사건의 심리 충실화 효과도 기대됨

■ 입법 추진 현황

- 법률안 발의 이후 국회에서의 논의 상황

- ▶ 2012. 9. 10. 이한성 의원 등 15인 법률안 발의
- ▶ 2013. 2. 19. 전체회의 상정 및 1소위 회부
- ▶ 2014. 12. 26./ 2015. 1. 8./ 2015. 4. 24./ 2015. 6. 17. 1소위 상정 ⇨ But, 통과 불발

- 1소위에서 논의 담보 상태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이유로 일부 법사위원들 반대 의견 제시
- 대안으로, 정식재판 청구 시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피고인을 법정구속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제시 ⇨ 이에 대해, 전해철 의원이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주장

■ 향후 입법추진 전략



- 적극적인 입법추진 필요

- 상고심제도 개선, 사실심 충실화, 법관 사기 진작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법률안으로 적극 추진 필요

- 입법추진 시기 및 방식

- 12. 4. 정기국회 마지막 1소위 안건으로 상정 추진

- 1소위 위원장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이므로, 야당 간사 전해철 의원 설득이 관건

- 사법부 제시 대안과 전해철 의원 제시 대안 사이의 선택의 문제 ⇨ 상고법원안 좌초 관련 야당 간사의 사법부에 대한 부채의식 자극하여, 대안을 양보해 줄 것 간곡히 요청

- 1소위 가결 후 정기국회 회기 내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 시도

4) 심리불속행제도의 활용 강화

- 적극적 활용

- 현재 약 60%인 심리불속행 비율을 80%로 제고하여 사실상 상고허가제와 사실상 동일하게 운용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

- 유의사항

-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활용 강화에 대해 종전과 달리 위헌결정을 할 가능성이 없는지 그 태도 변화 여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률을 그대로 두고 심불비율만 증가하는 방안은 대내외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고 오히려 외부적으로 강한 역풍을 불러올 수 있음

5) 경미사건 상고제한 방안

- 대상

- ① 소액 사건 이외에 5,000만 원 이하 등 일정액수 이하 사건



- ② 형사 고정사건 또는 벌금형 선고사건

▣ 효과 및 목적

- 업무경감 효과는 작으나, 제도 개선의 상징성이 있음
- 향후 상고제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법률상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상고허가제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획득함

▣ 개정안 (예시)

- ①안 : 명령·규칙·처분의 헌법위반이나 판례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 허용(→ 소액사건 상고이유 확대 적용)
- ②안 :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경우 등에만 상고 허용

6) 대법관 소수 증원론에 대한 방어논리 개발

▣ 개발 필요성

- 대부분 의원들이 상고심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따라서 입법추진이 좌절될 경우 현재 법무부 관계자가 공청회 등에서 주장하는 대법관 소수 증원론이 대법원 의도와는 달리 과거 3·4 공화국 시절에 이미 시행한 경험이 있고, 일선 법원에서 그다지 반대하는 기류가 아니므로 법원 외부의 전폭적 지지세를 얻어 입법추진 탄력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대법관 소수 증원론은 사법부 입장에서 수용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그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방어논리를 개발할 필요 있음

▣ 방어논리

- 대법관 증원과 상고법관 증원의 경제적 비용 대비
 - 대법관 1명 증원 비용으로 상고법관 3명 증원 가능
- 대법관 증원론의 본질적 한계 지적



- 소수 증원은 현재 상고사건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비추어 근본적 해결 불가능, 다수 증원은 대법원의 본래적 기능 수행 불가능

3. 대내적 대응 전략

가. 현황과 필요성

- ▣ 상고법원 입법 추진의 사실상 중단은 법관 사회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
 - 그동안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법원이 지나치게 올인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였음 ⇨ 그로 인하여 각종 인사·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오해도 누적
 - 입법 추진이 중단될 경우 ⇨ 누적된 오해와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될 가능성 있음
- ▣ 특히 사법행정 추진 환경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법원 조직 전체의 내부적 동요 ⇨ 중요 사법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풜 확산, CJ의 리더십 약화 초래까지 우려
- ▣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
 - 법관 사회의 전반적 여론 상황을 점검 ⇨ 근거 없는 오해와 심리적 동요를 차단·불식하고 안정을 도모할 필요 있음
 -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에서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 모색을 종합적으로 시도함

☑ 분석·접근 방법

- ▶ [미시적 접근] 상고법원 정책 자체에 초점 ⇨ ①법관 여론의 향배와 ②입법 추진 잔여 일정 고려
- ▶ [거시적 접근] 사법행정 전반 차원에 초점 ⇨ ③사법부 추진 사법정책의 전체적 균형과 ④CJ의 임기 cycle 고려



나. 현황 · 정세 분석

☑ 개요

- ▶ ①[미시적 고려 요소①] 각급 법원 법관들의 관심 방향과 그 정도
- ▶ ②[미시적 고려 요소②] 공식적·비공식적인 잔여 입법 추진 일정
- ▶ ③[거시적 고려 요소①] CJ의 임기 cycle
- ▶ ④[거시적 고려 요소②] 사법정책 전반의 균형 추진 필요 시점

▣ ①[미시적 고려 요소①] 각급 법원 법관들의 관심 방향과 그 정도

- 냉정하게 분석해보았을 때, 상고법원 정책에 대한 각급 법원 법관 대다수의 관심의 대상·방향·정도는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①관심의 대상	'상고법원 정책 자체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상고법원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여하'임
②관심의 방향	(기수·연령·직급이 낮을수록) 상고법원의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에 큰 관심 있음
③관심의 정도	전반적으로 기대만큼 높지 아니하였음

- [원인①] 사회의 전반적 가치관 변화로 법관들의 관심사가 철저히 개인화
- [원인②] 기수·연령·직급이 낮을수록 상고법원 설치를 통하여 확대·신설되는 상위 보직에의 접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원인③] 내부적으로 boom-up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착안점]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착안점
①관심의 대상	'상고법원 정책 자체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상고법원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여하'	➔ 정책 좌절 자체로 인한 상실감은 그리 크지 아닐 가능성



②관심의 방향	(기수·연령·직급이 낮을수록) 상고법원의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에 큰 관심 있음	➔ 정책 추진으로 인한 기회비용 문제[즉, 여타의 사법정책 추진 상황·내역]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가능성
②관심의 정도	전반적으로 기대만큼 높지 아니하였음	➔ 선제적 문제 제기 가능성보다 후발적 반응 가능성

■ 2[미시적 고려 요소②] 공식적·비공식적인 잔여 입법 추진 일정

● 실질적·비공식적 잔여 일정 ⇨ 사실상 기한 이미 종료

- 11월 중에 법사위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올해 안에 법률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짐

● 하지만, 형식적·공식적 잔여 일정 ⇨ 2016. 5. 29.(19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음

- 어차피 법률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에 폐기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 미리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음

☑ '형식적·공식적 잔여 일정'의 유의미성

▶ 홍일표 의원 ⇨ "내년 4월 총선이 끝난 후 임기 종료 시점 사이에 개최될 마지막 임시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때가 되면 의원들이 특정 사안에 참여하게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선선히 협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18대 국회 ⇨ 실제로 국회선진화법 등 4개 법안이 총선 후 5월 마지막 임시회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통과되기도 하였음

● **[착안점]** 사법행정 당국자의 공식적 의견 표명 시점 결정에는 형식적이지만 공식적인 일정이 고려될 수밖에 없고, 그 시점은 아직 상당한 기간을 남겨두고 있음

- 연착륙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활용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 있음



■ ③[거시적 고려 요소①] CJ의 임기 cycle

- 임기를 초반·중반·종반으로 3분하였을 때 終盤期에 해당하는 시점
 - 현 CJ 임기 ⇨ 2011. 9. ~ 2017. 9.
- **[착안점]** 임기 종반기에 중요 사법정책 추진 중단의 부정적 이미지가 지나치게 강하게 투영될 경우 레임덕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함
 - 부정적 이미지·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여야 함

■ ④[거시적 고려 요소②] 사법정책 전반의 균형 추진 필요 시점

- 역시 CJ 임기를 고려한, 큰 그림으로 접근할 필요 있음
- **[착안점]** 임기 종반기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여타 중요 사법정책 역점 추진, 활용을 통하여 긍정적 이미지의 상쇄·보완 효과를 기대

다. 구체적 방안

☑ 개요

- ▶ ①[미시적 고려 요소①] 각급 법원 법관들의 관심 방향과 그 정도
 - ☞ 현 시점에서 즉각적인 高수위의 입장 표명은 불요
- ▶ ②[미시적 고려 요소②] 공식적·비공식적인 잔여 입법 추진 일정
 - ☞ 공식적 브리핑 시점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 시로 함
- ▶ ③[거시적 고려 요소①] CJ의 임기 cycle
 - ☞ '상고법원 정책의 중단'이 아니라, '상고심 개선 방안을 포함한 사법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을 표방
- ▶ ④[거시적 고려 요소②] 사법정책 전반의 균형 추진 필요 시점
 - ☞ 임기 종반에 추진되어야 할 비전·정책의 적극적 발굴·추진

■ ①[미시적 접근 방안①] **현 시점에서 즉각적인 高수위의 입장 표명은 불요**



- [개요] ① 사법행정 당국자의 입장 표명은 ‘정책 중단·실패’의 이미지를 강하게 남기게 되므로 가급적 지양, ②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하여 낮은 수위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사실 전달, 정보 공유만 시도

- [기대 효과①] 각급 법원 법관들의 관심의 대상·방향·정도를 고려하여 볼 때, 즉각적인 고수위의 입장 표명은 불필요한 분란만 야기할 우려가 큼

- ① 정책 좌절 자체로 인한 상실감이 그리 크지 아닐 가능성 ⇨ ‘**정책 추진 중단**’ 자체를 부각시킬 필요 없음
- ② 정책 추진으로 인한 기회비용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가능성 ⇨ 상고법원 정책 중단에 관한 언급보다 **여타 사법정책 추진 계획에 관하여 밝히고 이를 통하여 어필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것임**
- ③ 선제적 문제 제기 가능성보다 후발적 반응 가능성 ⇨ **분란을 야기할 소재·화제를 먼저 던질 필요 없음**

- [기대 효과②] 사법행정 당국자의 지나친 유감 입장 표명은 CJ의 레임덕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참고] 대통령 사과의 딜레마·약순환

▶ 대국민 사과 ⇨ 국민 분노 ⇨ 레임덕 심화 ⇨ 대통령의 권위 추락

▶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때마다 국민들은 측은함을 느끼기보다는 분노를 표출하여 결국 레임덕 현상을 심화시키고 대통령의 권위 추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임** ⇨ **고위 책임자의 사과나 유감 표명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극도로 자제하여야 함**

- [구체적 방안]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법원장을 통하여 ‘① **현재 상황의 냉정한 전달** + ② **19대 국회 잔여 임기 동안 마지막까지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

▣ ② [미시적 접근 방안②] **공식적 브리핑 시점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 시로 함**

- [개요] 최종적으로 법률안 폐기 시 유감 표명 가능



- [기대 효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cooling time)을 확보하여 실질적 연착륙 도모
 - 그 시간 동안,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임기 중반에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제시하는 등 사전 정지 작업 실시
- [구체적 방안] 다음과 같이 진행함
 - [1차 대응] 공보관 명의로 브리핑 ⇨ 상고법원 입법 추진 실패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유감 표명
 - [필요한 경우 2차 대응] 긴급실국장회의 후 법원행정처장 명의 또는 대법관 행정회의 후 대법원장 명의로 (공보관이) 브리핑 ⇨ 현행 법령 하에서 대법원의 본래적 기능 정상화와 국민의 신속하고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단호한 의지 표명
- ③[거시적 접근 방안①] '상고법원 정책의 중단'이 아니라, '상고심 개선 방안을 포함한 사법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을 표방
 - [개요] 중단 선언이 아닌, 중장기 추진 과제로 전환함
 - 여타 주요 사법정책과 함께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하는 스탠스를 유지함
 - [기대 효과] '중요 사법정책의 좌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CJ 리더십 손상 또는 레임덕 가능성을 최소화
 - [구체적 로드맵] 다음과 같이 진행함
 - [1단계] 전국법원장회의 직후~19대 국회 임기 종료 시 ⇨ 현재와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되, 여타 주요 사법정책과 균형 도모
 - [2단계] 19대 국회 임기 종료 시~ ⇨ 중장기 추진 과제로 전환
 - 이에 따른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



시기	2015. 12.			2016. 1.			2.			3.			4.			5.		
	초순	중순	하순	초순	중순	하순	초순	중순	하순	초순	중순	하순	초순	중순	하순	초순	중순	하순
주요 일정	법원 장 회의		동계 휴정	동계 휴정				설 정기 연휴	인사				총선			임시 국회	임시 국회	19대 임기 종료
추진 개요	①사실 전달			②정책 우선순위 조정, 임기 종반의 적극적 비전 제시									③의견 표명					
구체 내용	- 법원장회의를 통한 사실 전달, 정보 공유			- 대표 정책, 민생 정책 등 임기 종반의 적극적 추진 정책을 전면 에 내세워 추진함 - 상고법원 추진은 현재와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되, 여타 주요 사 법정책과 균형 도모									- 최종적으로 법 률안 폐기 시 유감 표명 - 중장기 과제로 전환					

● [구체적 방안] 각급법원 순회 간담회 개최

- 최근 일선 법원의 긍정적 평가와 큰 호응을 이끌어 낸 순회 간담회 방식으로 상고법원 입법추진 경과, 향후 상고심제도 개선을 포함한 사법정책 추진 방향 등에 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선 법관에게 정보 제공
- 특히, CJ 임기 하반기에 상고법원 입법 추진 난항으로 내부 분위기가 동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행정처와 일선 법원과의 긴밀한 소통 창구와 스킨십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순회 간담회를 통해 내부여론 수습 도모
- 다만, 순회 간담회의 추가실시가 법원 내부의 여론무마용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향후 주기적 순회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하여 행정처와 일선 법원 사이의 지속적 소통과 정보공유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

- [유의점] 다만, 상고심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계속 유지할 경우, 대법관 증원론 등 외부로부터의 역풍에 유의하여 대비할 필요 있음

▣ ④[거시적 고려 요소④] 임기 종반에 추진되어야할 비전·정책의 적극적 발굴·추진

- [개요] ‘상고법원 추진 중단’이라는 ‘부정적·소극적 행보’가 아니라 ‘여타 주요 사법정책의 균형적 추진’이라는 ‘긍정적·적극적 행보’를



통하여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방안 구사

- [기대 효과] CJ의 임기 종반기 관리 차원의 접근이기도 함
- [구체적 방안①] 대표 정책의 완성

☑ [참고] 대표 정책·업적의 중요성

- ▶ 지도자는 퇴임 후에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 업적이 있어야 함 ⇨ 이를 통하여 훗날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음
- ▶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 '물대통령', '레임덕 정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5년 내내 흔들렸으나, '북방정책'이라는 대표 업적 덕분에 나름대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음

- 현 CJ의 대표 정책은 결국 '소통 정책' 이어야 함 ⇨ 임기 종반에는 임기 동안 진행됨 소통 정책을 최대한 완성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①국민과의 소통 ⇨ 행사 중심의 소모적 형태를 지양하고 스마트한 소통 정책의 완성 형태를 연구하여 현 CJ의 임기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통 정책을 제시하여야 함
- ②내부 소통 ⇨ '사법행정위원회' 등 사법행정 과정에서의 철저적 참여 보장을 추진하여야 함, 이는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쌓인 법관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효과도 클 것임

- [구체적 방안②] 민생 정책 강조·주력

☑ [참고] 민생 정책의 중요성

- ▶ [예] 한국 대통령의 경우 ⇨ 결국 임기 말 시점의 경제 성적표가 대통령 임기 전반에 대한 평가를 좌우함
- ▶ [예] 2012년 미국 대선의 경우 ⇨ 태풍 피해가 발생하자 오바마와 롬니는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전략에 주력, 특히 오바마가 3일 동안 유세를 중단한 것이 큰 호응을 받음

- 법관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소형 이슈' 들을 전면에 내세워 검토·추진할 필요 있음
- ①복지 ⇨ 이미 상당히 많은 아이템이 개발·집행되었으나, 더욱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예컨대, 법관들의 관심 집중되고 있는 안식월 제도, 유연근무제, 각종 복지시설 확충 등에 관한 정책 추진 열의와 가시적 성과



물 제시

- ②법원문화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성평등, 부장-배석 관계, 사무분담, 근무평정,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라인 등의 이슈를 CJ가 직접 챙기고 개선 방향을 제시

[유사 사례] 배석판사의 사건 메모 작성·납품 문제

- ▶ CJ께서 직접 적극적인 견해를 수차례 의견·관심 표명[21기 부장판사들에 대한 연임법관 간담회 시 문제 제기·권고, 각급 법원 업무보고 시 재당부·재확인]
⇨ 관행 개선 ⇨ 각급 법원 법관들로부터 큰 호응

[끝]



상고법원 추진 관련 내부 연착륙 방안

2015. 12.

법원행정처

1. 검토 배경

▣ 정기국회 내 상고법원 입법 실패 현실화

- 11. 24. 법사위 1소위에서 논의 이후, 향후 법사위에서의 심사일정 미지수 상태로, 12. 9. 정기국회 회기 만료일 임박
- 이로 인해 사법부 대내외적으로, 사실상 19대 국회 내 입법은 어려워졌다는 부정론 확산되는 분위기

▣ 상고법원 정책 중단 등 공표 여부 검토

- 입법추진의 부정적 상황을 받아들여, 현 시점에서 상고법원 추진 실패를 공인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 필요
- 현재 상고법원 정책에 대한 법관사회의 관심과 기대수준 등을 토대로, 정책추진 중단 내지 실패 선언이 사법부 내부에 미칠 영향 분석
⇒ 공식적 입장 표명의 시기, 방식 등 향후 대응방안 검토

2. 상고법원 정책 관련 사법부 내부 현황 등 분석

▣ 우려보다 상고법원 정책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관심과 기대 수준 높지 않음

- 상고법원 정책에 대한 각급 법원 법관 대다수의 관심의 대상·방향·정도는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및 원인
①관심의 대상	'상고법원 정책 자체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 상고법원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여하 '임 [원인] 가치관 등 변화로 법관들 관심사도 철저히 개인화
②관심의 방향	(기수·연령·직급이 낮을수록) 상고법원의 ' 긍정적 영향 '보다 ' 부정적 영향 '에 큰 관심 있음 [원인] 기수·연령·직급이 낮을수록 상고법원 설치에 따른 상위 보직에의 접근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음
③관심의 정도	전반적으로 기대만큼 높지 아니하였음 [원인] 내부적으로 boom-up 이루어지지 않았음

- 법관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고법원 설치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

☑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에서 개진된 상고법원 관련 3대 주요 의견

- ▶ 상고법원 정책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요구
- ▶ 상고법원 도입으로 오히려 상고심 업무량은 증가하고, 하급심의 위상과 기능 약화될 우려 있음
- ▶ 상고법원 도입이 가져올 사법부의 변화될 모습에 대다수 법관들이 관심 없음

- 19대 국회일정 진행경과로 입법추진 실패가능성이 증가되어감에도, 그로 인한 법관 사회 내부의 우려 및 동요 분위기도 쉽게 감지되지 않고 있음

☑ 법관들 익명 카페 '이판사판 야단법석'의 상고법원 관련 게시글 현황

- ▶ 작년 법률안 발의 무렵부터 상고법원 제도에 대한 반대 취지의 게시글 등장
⇒ 상당한 수의 댓글 동반
- ▶ 시간이 지나면서 상고법원 관련 게시글 수 점진적으로 감소 ⇒ 10. 6. 대한변협 신문 기사 인용한 게시글 및 그에 대한 댓글이 최종 의사표현 활동
- ▶ 10월 초 이후, 한참 국회에서 법률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고법원에 대한 게시글 발견되지 않고 있음 ⇒ 입법 실패 분위기로 흐르면서, 익명 카페 논의대상에서도 사실상 배제

- 복귀 법원장, 고법부장 승진 기대하는 고참 지법부장급에서만, 인사적체 해소 등 파급효과를 기대하면서 상고법원 설치에 귀추 주목



⇒ 다만, 직위상의 특성, 주관적 기대효과를 표면적으로 정당화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실망감을 넘어서서 공론화된 불만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

▣ 공식적으로 **잔여 입법추진 일정 남아 있는 상황**

● 실질적·비공식적 잔여 일정 ⇒ 사실상 기한 이미 종료

- 11월 중에 법사위 1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19대 국회 내 법률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짐

● 하지만, 형식적·공식적 잔여 일정 ⇒ 2016. 5. 29.(19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음

- 어차피 법률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에 폐기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 미리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음

☑ '형식적·공식적 잔여 일정'의 유의미성

▶ 홍일표 의원 ⇒ "내년 4월 총선이 끝난 후 임기 종료 시점 사이에 개최될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때가 되면 의원들이 특정 사안에 참여하게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선선히 협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18대 국회 ⇒ 실제로 국회선진화법 등 4개 법안이 19대 총선 후 18대국회 5월 마지막 임시회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통과되기도 하였음

3. 향후 대응방안

가. 상고법원 추진의 사실상 중단 또는 실패 선언이 가져올 영향

▣ **관념적인 긍정적 의미**

● 법원 대내외에 현재 입법추진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사법부의 입장 명확히 제시 ⇒ 새로운 사법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상고법원에 투입한 사법역량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전기 마련

▣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역효과가 발생할 것임**



- 단기간 내에 법원외부에 어필하고 내부적으로 법관사회를 다독일 수 있는 주요 사법정책의 수립·제시가 곤란함 ⇨ 상고법원 정책과 등가관계 성립하는 정책의 발굴 없다면, 대내외의 이목은 사법부가 제시하는 청사진이 아니라, 상고법원 정책의 공인된 실패와 그 책임 소재 등에 집중될 것
- 이후 상고심구조 개편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상고심제도 개선의 시급성과 절박성에 대한 공론화는 상당히 이루어졌음
⇨ 어느 순간 상고법원 설치가 아니더라도 그 대안 형태의 제도 개선 분위기가 급속히 형성될 수 있음
 - 20대 국회 초반에 법사위 구성 현황, BH 민정수석 등 VIP 참모진 교체 등 긍정적 외부여건 조성으로 상고법원 재추진 원동력이 확보될 수도 있음
 - 상고법원 정책 중단 및 실패 공표는, 자칫 상고심구조 개편 정책 전반에 대한 사법부의 포기 선언으로 받아들여져, 위와 같은 후일 도모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음
- 현 상황에서, 오히려 법관 사회의 동요를 더욱 부추길 수 있음
 - 지난 주 금요일(12. 4.)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미 상고법원 정책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행정처의 공식 입장 표명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법원행정처장님의 발언 요지

“법무부, 즉 정부의 반대가 입법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법사위 1소위에 반대 의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 입법 추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전국법원장회의 공식 보도자료 내용

「전국 법원장들은, 대법원의 사회적 갈등 해소 기능을 강화하고 재판받는 국민의 충실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고, 하급심의 더욱 충실한 재판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특별한 상황 변동 없이, 갑작스레 정책중단이나 실패 표명할 명분이 없고, 그렇게 할 경우 법원장들까지 포함한 법관사회 내부의 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음
- 정책 중단 또는 실패의 실제이유를 제시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실제이유를 설명한다면 제2, 제3의 분란이 야기될 것
- 상고법원 정책이 좌절된 주요 원인은 BH, 검찰 출신 법사위원의 반대 등 외부환경에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실패원인을 솔직히 표명할 경우, 대외기관과의 또 다른 갈등 심화로 다른 정책까지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고, 완곡한 설명으로 포장할 경우 법관사회 내부를 이해시킬만한 설득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
임 ⇨ 정책 중단이나 실패 공표로 얻을 수 있는 순기능 전혀 없음

나. 공식 입장 표명 등 구체적 방안

▣ **당분간은 법원 내부 여론의 향배에 주목**

- 일단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제시된 메시지가 법원장을 통하여 일선 법관들에게 전파되는 국면 형성될 것
- 이후 내부 동향을 사법행정라인이나 법관들의 인터넷 익명 카페 활동, 언론의 기사 등을 통해 취합·점검
- [동요 등 변화 조짐 없는 경우] 선제적으로 분란을 야기할 소재를 제시할 필요 없음 ⇨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공식적인 입법 잔여 일정까지 입법 추진 지속하는 외관만 유지
- [실패 분위기 확산에 따른 동요 조짐 있는 경우] 단계별 정보 제공 조치 등 강구
 - (1단계) 그 시점에서의 입법추진 환경의 냉정한 전달
 - (2단계) 법관들의 실망감을 일정 수준 위무해 줄 수 있는 소위 ‘민생 사법



정책' 아이템 제시

■ (3단계) 공식적인 정책 추진 중단 입장 표명

▣ **입법추진환경 등에 관한 정보공유** ⇨ 2016. 3. 법원장간담회 or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활용

- 내년 2월 임시국회 직후 열리는 3월 법원장간담회에서 대법원장님 또는 처장님 인사말씀 통해 새로운 메시지 전달
 - ① 사실상 상고법원 정책 중단 메시지 완곡히 전달 + ② 큰 틀에서의 향후 상고심제도 개선을 포함한 사법정책 추진 방향 제시
- 그 이전에 내부 분위기 변화 감지되는 경우, 비공식적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개최
 - 최근 일선 법원의 긍정적 평가와 큰 호응을 이끌어 낸 순회 간담회 방식으로 ① 그간의 상고법원 입법추진 경과 및 불투명한 전망 등에 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선법관에게 정보제공 + ② 소위 '민생 사법정책' 아이템 제시
 -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쌍방향 의사소통 방식의 순회간담회를 통해 내부 여론 수습 도모
 - 다만, 순회 간담회의 추가실시가 법원 내부의 여론무마용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향후 주기적 순회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하여 행정처와 일선 법원 사이의 지속적 소통과 정보공유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

▣ **상고법원 정책 실패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발굴, 제시**

-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 ①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 ② 민사상고기각결정 제도 도입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 재추진
 - 입법 재추진 여부 및 그 시기는 국회상황 등 입법환경을 고려하여 결정
- 일선 법관들의 업무량 경감과 직결되거나, 복지 증진·조직문화 개



선에 기여하는 소위 '민생 사법정책' 아이템 발굴·추진

- 법관들의 복지증진, 인사제도 및 법원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의 일환
 - 처장님 명의의 8. 25.자 복지 관련, 9. 2.자 인사 관련 코트넷 게시글에 이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법관들의 복지증진, 인사제도 및 법원문화 개선정책의 일환임을 명분으로 함
 - 상고법원 추진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내부여론 호도형 정책 추진으로 오인될 가능성 낮음

☑ 민생 사법정책 아이템 예시

① 재판업무 관련

- 실질사건 수를 기준으로 적정 처리사건 수 도입 (최소 - 최대)
- 소규모 지원 단위의 상주 법관 최소화 ⇨ 순회 재판 활성화
- 평일 야간 당직 폐지 ⇨ 유선 축선 대기로 변경, 부장판사도 평일 야간 당직 업무 담당

② 복지 관련

- 안식월 제도 도입
- 연가저축제 도입
- 유연근무제 본격 실시
- 각종 복지시설 확충 등

③ 법원 문화 관련

- 소통행사 구조조정
- 각급 법원 각종 연구회 구조조정
- 합의부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배석판사의 사건 메모 작성 금지 등

※ 대법원장님의 권고 있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사건 메모를 지시하는 재판장이 상당수 있는 실정 ⇨ 법원장들을 통한 현황 파악 및 근절 대책 추진

- **공식적 입장 표명은 원칙적으로 19대 국회 임기 만료 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



- [개요] 최종적으로 법률안 폐기 시 유감 표명 가능
- [기대 효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cooling time)을 확보하여 실질적 연착륙 도모
 - 그 시간 동안,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임기 종반기에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제시하는 등 사전 정지 작업 실시
- [구체적 방안] 다음과 같이 진행함
 - [1차 대응] 공보관 명의로 브리핑 ⇨ 상고법원 입법추진 실패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유감 표명
 - [필요한 경우 2차 대응] 긴급실국장회의 후 법원행정처장 명의 또는 대법관 행정회의 후 대법원장 명의로 (공보관이) 브리핑 ⇨ 현행 법령 하에서 대법원의 본래적 기능 강화와 국민의 신속하고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단호한 의지 천명

상고법원 후속 대책

2016. 5. 4.(林)

1. 검토 개요

- 19대 국회 임기에 상고법원안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
- 상고법원안의 무산 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20대 국회에 대법원 상고심 구조개편안을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검토 필요

2. 상고법원안 무산 원인 분석

가. BH, 법무부의 반대

- 상고법원 신설방안은 대통령의 최고법원 구성 권한에 대한 침해라는 논거를 내세워 반대
- 상고법원 신설로 대법원의 권한이 더 크질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
- 최고법원 구성안을 정부입법으로 하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

나. 재야법조의 반대

- 대한변호사협회
 - 대법관 증원과 심리불속행제도 폐지라는 선거공약 이행 차원에서 무조건 반대
- 지방변호사회
 - 부산·창원 지방변호사회에서 고등법원 관내 상고법원 재판부가 설치되지 않는 데 대한 반발 심리에서 조직적인 반대 활동
 - 반면에 서울, 인천, 대구 등의 지방변호사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내는 등 변호사회의 의견은 나뉘어짐
- 민변의 반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대법관 증원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면서 조직적인 반대

다. 학계의 반대

- 상고법원안을 찬성하는 법학교수는 일부 언론이나 공청회 등에서 개인적인 칼럼, 의견 등을 제시한 반면, 상고법원안을 반대하는 법학교수들은 조직적으로 반대 성명
- 특히 진보 성향의 법학교수들이 주도적으로 반대

라. 정치권의 동향

- 정치권에서는 민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대를 한 반면, 상고법원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나뉘
- 비록 홍일표 의원 등 168명의 국회의원들이 상고법원안을 발의하기는 했으나, 법사위 내부에서 검찰, 민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의견

마. 언론의 반응

- 언론은 대체로 대법원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면서도, 상고법원안과 대법관증원론을 같은 비중으로 보도함으로써, 상고법원이 불가피한 차선택이라는 데에 힘을 실어 주지 아니함
- 특히 진보성향의 언론에서는 상고법원안이 대법원의 기득권 보호 내지 권한 강화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한 비판

바. 법원 내부의 반응

- 법원장, 고등부장 등은 상고법원 추진에 관심을 가진 반면, 지방부장 이하의 대부분 법관들은 그 추진 여부에 무관심한 분위기
- 오히려 대법관 증원론이나 대법원 이원적 구성론이 더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는 법관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등 법원 내부의 의사 결집에도 한계 노정

3. 상고법원안 마무리 대책

가. 대법원의 의견 제시 필요

-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상고법원안이 폐기되는 경우, 19대 국회 임기 만료 시점에 대법원의 성명 또는 논평, 의견 등의 형식을 빌려 의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 내용(안)

- 대법원에서는 상고사건 수가 폭증함에 따라 상고심의 법령 해석 통일과 권리 구제기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법령 해석 통일이나 공적 이익과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서, 그렇지 않은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심판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고법원안을 추진하였으나,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음
-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법원으로서의 상고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 대부분의 최고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상고허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책임에도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부득이한 차선책으로 추진한 상고법원안이 무산된 것은 대단히 아쉬움
- 대법원은 상고법원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현행 제도상 대법원의 법령 해석의 통일과 권리 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상고심 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합리적인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나. 향후 추진방안

(1) 제1안: 상고법원안 재추진

- 홍일표 의원의 개인적 소신을 이유로 종전 상고법원안을 재추진

(2) 제2안: 상고허가제도 추진

- 상고심제도의 궁극적인 최선책인 상고허가제도를 의원입법안으로 발의

(3) 제3안: 고등법원 상고부제도 추진

- 17대 국회 때 입법화 일보 직전에서 무산된 고등법원 상고부제도를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하는 방안
 - 특히 지방의 변호사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음

(4) 제4안: 현행 제도 아래서의 제도 개선 추진

- 현행 제도 아래에서 심리불속행 제도의 개선(구체적인 심리불속행 기준 마련) 및 사실상 상고허가제도의 시행

(5) 검토의견: 1, 2, 3, 4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

-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상고법원안을 추진하고, 동시에 상고허가제도, 고등법원 상고부제도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면서, 이와 별도로 현행 제도 아래에서 사실상 상고허가제도를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

☞ 상고허가제도의 ‘기정사실화’

다. 상고법원 무산 원인에 대한 대책

- 앞서 본 상고법원의 무산 원인을 분석하고, 각별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BH 및 법무부
 - 상고법원안은 더 이상 설득 논리를 개발하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제도개선안(상고제한제도)을 제시하고 설득할 필요
 - 그러나 현상황에 비추어 상고제한제도에 대해 그리 우호적인 분위기로 급변할 것으로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재야법조
 - 2017년 대한변협 차기회장 선출 이후에도 종전의 대법관 증원론을 그대로 고수할 가능성이 농후함
 -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 비해서는 호전될 가능성이 기대되므로, 향후 적극적인 설득 노력 필요
 - 특히 민변에 대한 설득 노력이 필요한데, 민변에서는 이에 대한 대가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즉 진보적 대법관 임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의 BH 상황에서는 수용 난망
 - 지방의 변호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를 공론화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

○ 학계

- 상고법원을 반대한 법학교수들도 상고허가제도를 논리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기대
- 주요 학회를 중심으로 상고허가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점을 공론화
- 상고허가제도는 사실심 충실화가 전제로 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예상되므로, 금년과 내년에 지속적으로 사실심 충실화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 정치권

- 정치권 설득을 위해서는 재야법조와 학계, 언론 등의 여론 조성이 선결문제
- 상고허가제도 도입시 국민 입장에서 어떤 면이 좋아지는지에 관한 설득 논리 발굴 필요

○ 언론

- 각국의 상고제도에 관한 연구자료를 책자, 팜플릿으로 배포하는 등 설득 노력 필요
- 특히 대법관 증원론의 문제점에 관한 집중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학자들의 공론화

○ 법원 내부

- 대법원 상고심 개편문제에 관한 무관심한 태도를 바꾸기 위한 사법행정적 노력 필요

라. 구체적 추진방안

- 비록 19대 국회에서 상고법원안이 무산되었다고 하여 더 이상 대법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외부의 의견, 특히 대법관 증원론이 힘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연구 및 추진은 필수적으로 요청됨

-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상고법원안 대신에 상고허가제도를 20대 국

회 임기 초기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

- 19대 국회 임기만료 후 20대 국회 임기 초기에 상고허가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 우려
- 즉, 19대 국회 때에는 마치 상고법원안 이외의 대안은 사실상 없는 듯 주장하다가 20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상고허가제도를 주창하게 되면,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 우려
- 20대 국회 구성은 19대에 비하여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BH나 법무부, 검찰, 대한변협, 학계, 언론 등의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허가제도를 20대 국회 초기에 곧바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이 우려됨
- 2017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예상됨
 - 2017년 1월 대한변협회장 및 각 지방변호사회장 선거 예정
 - 2017년 9월 차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예정
 - 2017년 12월 차기 대통령 선거 예정
- 상고허가제도는 위와 같은 여러 상황 변화를 보아 가면서 적절한 시점을 택하여 공론화할 필요
- 2017년 1월 이후 차기 대한변협회장 및 각 지방변호사회장 선출 이후 상고법원안에 호의적인 상황이면 상고법원안 재추진
- 그러나 BH, 법무부의 참모진 개편 등의 결정적인 상황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상고법원안을 재추진하는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임
- 2017년 9월 차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상고심 개편문제 논의는 당연히 예상됨
- 이 시기에 상고허가제도 등 상고심제도 개편의 불가피성을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우호적인 여론 형성 과정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는 20대 국회 초기부터 상고허가제도의 ‘기정사실화’가 요청됨
 -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를 사실상 상고허가제도로 운영하는

방안 또는 심리불속행 제도 대신 선례적 가치가 없는 사건의 경우 상고심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판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시행함과 동시에 학회를 중심으로 공론화해 갈 필요



상고법원 입법추진 환경 및 대응전략

2018. 7. 31.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 설치 법률안 국회 상정

- 2. 5.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전으로 첫 심사 ⇨ 법률안 반대 세력과의 진검 승부 돌입
-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완료해야 하는 상황 ⇨ 모든 역량의 결집 절실

☑ 입법 추진 로드맵

- ▶ 4월 초 법사위 공청회 개최
- ▶ 4월 임시국회 법사위 소위 심사
- ▶ 6월 임시국회 법사위 소위·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
- ※ 하반기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예산심사, 여야 총선 대비 정국 돌입으로 법안 심사 사실상 불가능 ⇨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의안 자동 폐기

▣ 하지만, 상고법원 입법 추진 동력은 기대 이하이고, 오히려 사법부 대내외적으로 입법 추진의 장애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

- [사법부 외부] ① 굵직한 정치 현안(공무원연금개혁, 청문회 정국, 경제·통일정책 추진 등)으로 새로운 의제 발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 + ② BH·법무부·변협·언론의 입법 견제·방해 분위기 여전
- [사법부 내부] ① 일부 판사의 개인 일탈행위(최 판사·유 판사·이 부장판사 사건 등) 대처로 인한 역량 분산 + ② 상고법원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비관론·무관심 분위기 감지
- 그 동안 사법부 외부 대응에 치중 ⇨ 내부 단속 및 응집 노력 상대적으로 미진 ⇨ 사법부 외부·내부의 입법 환경 고르게 분석하고 각각의 맞춤형 대응 전략 펼쳐야 할 시점



- 현재의 입법 추진 환경 및 6월 임시국회에 도래할 변화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대응전략 수립 필요
 - 사법부 대내외 현황 점검 ⇨ 타개책 고안
 - 국회, 언론 등 설득·공약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은 주무 부서인 사법정책실과 협의하여 추진

2. 사법부 외부 현황 및 대응전략

가. 국회

1) 현황

- 전반적으로 견제·반대 분위기 팽배
 - [여당] 검찰 출신 의원들이 반대 세력의 중심임
 - ☑ BH와 검찰의 영향력 행사가 주원인으로 보임
 - [야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 기류 강함
 - 특히 민변과 연계성 강한 親盧 의원들이 반대 세력의 중심임
 - 대표적으로 전해철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 등
 - 문제의 심각성
 - 반대 의원들이 주로 법사위에 포진되어 있음
 - 법사위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 실무진들도 입법에 대한 거부 반응 표출
- 하지만 약간의 변화 징후도 포착
 - [법사위원 교체] 박민식 → 김재경
 - 반대 입장인 검찰 출신의 박민식 의원 미방위 간사로 이동
 - 상고법원 법률안에 발의자로 참여한 김재경 의원 법사위원으로 합류 ⇨ 여당 내 분위기 반전 카드로 적임



- [김재경 의원] 1961년생, 경남 진주 출신, 3선 의원, 연수원 19기

- 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를 통한 국회 내 공론화 개시

☑ 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개요

- ▶주최: 법사위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 ▶일시 · 장소: 3. 2.(월) 13:30~16: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좌장: 신○○ 연세대 부총장
- ▶주제발표: 이○○ 교수/이○○ 변호사
- ▶토론: 김○○ 심의관/김○○ 부장검사/이○○ 변호사/김○○ 교수/이○○ 변호사/이○○ 논설위원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모두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에는 동의, 다만 세부 방법론에서 입장차 보임 ⇨ 향후 입법 성사를 위한 국회 내 필요 최소한의 추동력 확보

2) 향후 변수

■ ①4월 초 법사위 공청회

- 2. 23.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고법원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안건 채택
 - 4월 임시국회 초반 개최 유력
 - 현재 구체적 일정, 참여할 기관 및 패널 선정 등 세부 계획 수립 단계
- 법사위원들 참여 아래 상고법원안의 핵심 내용 및 이슈에 관한 적나라한 토론과 공방 예상 ⇨ 그 논의 결과가 이후 법사위 법안 심사 에 직접적 · 결정적 영향 미칠 것

■ ②5. 31. 법사위 여당 간사 교체 가능성 ⇨ 입법 추진에 부정적 파급력 우려

- 現 홍일표 의원에서 이한성 의원으로 교체 예정
 - [이한성 의원] (중략)



☑ 이한성 의원 자질론 제기 사례

(생략)

- 다만, 이 의원이 당내 경북도당위원장직을 원하고 있어, 법사위 간 사직을 말지 않을 것이라는 당내 예측도 흘러나오고 있음

▣ [3] 5월 초 야당 원내대표 경선

- [후보군]

성명	선거구	생년	출생지	출신고	출신대
설훈	부천시 원미구	53년	경남 창원	마산고	고려대
이종걸	안양시 만안구	57년	서울	경기고	서울대
김동철	광주 광산구	55년	전남 광주	광주일고	서울대
박기춘	남양주시	56년	경기 남양주	광동고	대진대
조정식	시흥시	63년	서울	동성고	연세대

- [경선 전망] ⇨ 박기춘 의원 가장 유력하다는 설
 - 現 우윤근 원내대표가 호남 출신이어서, 차기는 수도권 출신일 것이라는 야당 내 시각 우세
 - [박기춘 의원] 계파색이 없어 의원 개개인들과 두루 친분 있고, 오래전부터 원내대표 경선 차분히 준비 중이라는 평,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으로 물러난 2012. 12. 원내대표직 약 4개월 수행한 전력이 변수 ⇨ 사법부에 대하여 나름 우호적 입장이라는 전언
 - [이종걸 의원] 2014. 10. 현 우윤근 원내대표와 2차 경선까지 치룬 경험 강점, 의욕 충만한 ‘쟁걸음’ 중, 다만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계파간 대결 아닌 인물 대결이어서 의원들의 호감이 크지 않다는 소문 ⇨ 올사 출신으로 접촉면 확대에 유리
 - [설훈 의원] 5월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리를 물러나는데 따른 ‘한 자리’ 열망 큼, 저격수 원조 이미지로 여야 ‘공존 모드’ 단절될 것이란 우려 확산 ⇨ 선출 시 사법부에도 부정적 영향 클 것으로 예측



- [김동철, 조정식 의원]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경선 출마 장고 중

▣ 4.4.29 재보궐 선거 ⇨ 박 대통령 중간 평가+20대 총선 풍향계

- 서울관악을, 성남중원, 광주서구을, 인천서구-강화군을 4곳 ⇨ 대체로 야권 기반 지역구 (야 3곳/ 여 1곳 우세 지역)
- [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외 1개 이상 지역구 추가 확보 기대
- [야당] 야권 후보 난립으로 광주서구을에서까지 위기감 고조
- 현 정국 판세 이어질 경우, 여당 승리 점쳐짐 ⇨ 상고법원안 처리에서도 여당이 보다 강력한 키를 쥐게 될 수 있음

3) 대응전략

▣ 1. 치밀한 법사위원 등 접촉 계획 및 설득전략 수립

- [목표] ① 반대의견 고착화되지 않고 유연성 갖도록 설득, ② 강력한 지지·우호 의원 확실히 포섭 ⇨ Key man으로 활용
- [시기] 4월 법사위 공청회 이전에 개별적·적극적 접촉 긴요
 - 공청회에서 일단 의견표명하면 이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입장 변경 곤란
 - 법안 발의를 위한 접촉 시와 유사한 빈도 및 강도로 대면 설득 강화
- [방법①]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발언 기초로 의원별 설득·전략 포인트 점검

☑ 2. 5.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법사위원 질의 개요

- ▶ 서기호 위원 ⇨ 상고법관 임명절차 문제 제기, 4심제 논란, 상고사건 증가 원인 등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 ▶ 임내현 위원 ⇨ 상고법관 임명과정에 대한 대안 제시 필요
- ▶ 박민식 위원 ⇨ 헌법재판소와의 관계가 문제,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가 상고제도는 미국과 같이 바꾸는 것이 옳은지
- ▶ 노철래 위원 ⇨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 전해철 위원 ⇨ 하급심 강화 방안 철저 실시, 대법관 구성 다양화 필요



- [對 상고법관 임명절차] 법안 심사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 방안 등 절충 가능하다는 점 설득
- [對 대법관 증원론] 대법관 증원론의 허상, 효과 미진, 최고법원 정체성과의 부적합 등 강조
- [對 하급심 강화]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정책 추진 내용 설명
- [對 대법관 구성 다양화] 지속적 노력 약속
- [방법②] 홍일표 의원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 주문
 - 예상보다 반대 분위기가 거센 상황에 대하여 홍 의원 스스로 약간 당혹해 하는 분위기 보임
 - 그러나 6월 내 입법 성사를 위해서는 법안 대표발의자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국면 ⇨ 법원과 이미 같은 배에 탔고, 입법 실패는 자신의 정치 경력에도 흠집이 될 수 있다는 점 암시하여 좀 더 능동적인 도움 이끌어내야 함
- [방법③] 법사위 내 설득 거점 의원 활용 ⇨ 반대 목소리 무마+우호적 분위기 조성
 - 여야별, 무계감·영향력 있는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입법 필요성 설명 ⇨ 법사위 회의장에서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는 역할 기대
 - [여당 설득 거점 의원] 이병석 의원
 - 포항에 지역구를 둔 국회 부의장 출신 4선 의원 중진으로서, 당내 영향력 뿐만 아니라 법사위 내 영남 지역구 위원(김도읍, 이한성 의원 등)에게 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이한성 의원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 및 1소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이병석 의원의 영향력 발휘는 더욱 긴요해질 것임
 - 지역의 발전을 위한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이병석 의원에게 제공하여, 홍보 기회 등을 제공하여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안 등 고려

이병석 의원 관심 사항 ⇨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



- ▶ 현 청사는 수성구 범어동 소재
- ▶ 수성구 만촌동 남부정류장 인근 후보지로 물망
- ▶ 동구 신서혁신도시 주변은 인근 공항 소음 문제로 애초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외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야당 설득 거점 의원①] **우윤근** 의원

- 親법원 성향이나, 현재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어 상고법원안에 대한 강한 지지 및 동료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지 않고 있음
- 그러나 5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날 예정(경선 불출마 선언) ⇨ 운신의 폭 자유로워져 상고법원안에 대한 적극적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

- [야당 설득 거점 의원②] **이춘석** 의원

- 율사 출신으로 법원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어, 상고제도 개선의 시급성과 차선책으로서의 상고법원안의 취지, 기대효과 등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기에 유리
- 평소 법원과 지근 관계를 유지해 온 점, 동료 의원들 사이에 법리에 밝고 합리적이라는 인식 형성되어 있는 점도 장점

● [방법④] 전문위원 · 입법조사관에 대한 설득 병행

- 전문위원 · 입법조사관 등 실무진이 입법 과정에서 방해세력이 되지 않도록 부정적 인식 희석화 노력 지속
- 공략 대상별로 역할 분담 ⇨ 전문위원은 실장 · 부장판사급이, 입법조사관은 평심의관이 분담
- 공략 포인트 ⇨ 각 전문위원실의 변호사 자격 있는 입법조사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

■ [2]4월 **공청회 성공적 개최** 추진

- 공청회 주최자로 보나 시기상으로 보나, 4월 공청회는 입법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임
- 준비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공청회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



야 함

- 법사위원장, 여야 간사와 공청회 개최 관련 지속적인 의견 교환
- 전체적인 진행 방향, 세부 일정, 참여자 선정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
⇒ 우호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추진, 위험요인은 미리 점검하여 대비책 마련
- 공청회가 입법 통과를 전제로 미시적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는 입법예고와 유사한 공론화 과정이 되도록 추진해야 함

■ [3]분위기 반전을 위한 논의 프레임 변경 추진

- 상고법원안 VS 대법관 증원론 ⇒ **상고허가제 VS 대법관 증원론**
 - 상고법원안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제기되면서, 상고심 개선 대안으로 대법관 증원론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일부 감지됨
 - 현재 구도로서는, 상대적으로 생경한 상고법원보다 직관적으로 이해되기 쉬운 대법관 증원론에 보다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상고법원안은 양 극단인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론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한국의 사법현실에 맞춘 한국형 상고허가제라는 점을 이해시키고, 이를 관철해내기 위하여 논의 프레임을 상고허가제 VS 대법관 증원론으로 변경 검토
- 대법원 VS 법사위원들 ⇒ **법사위원 VS 법사위원**
 - 여야를 막론하고,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할 뿐, 법사위원들 사이에는 생산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 입법 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법사위원들 중 일부로 하여금 상고허가제의 도입을 주장하게 함으로써, 법사위원간의 논쟁을 촉발시켜 활발한 논의를 유도하는 한편, 대법원은 기존의 수세적 당사자 입장에서 벗어나 객관적 제3자로서의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임

■ [4]여야 수뇌부 접촉·활용



- 6월 임시국회 임박해서까지 법사위 논의 지지부진할 경우, 여야 수뇌부의 개입·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음
- 2월 초 선출된 여당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 설득 작업 지속
 - ‘판사 집안’이라는 법조 인맥과 지역구 관심사 활용하여 설득
 - 여당 법사위원들에게도 상고법원안에 대한 찬성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 세력으로 포섭
- 5월경 야당 원내대표 선출 유력한 박기춘, 이종걸 의원 접촉 시도·강화
 - 두 의원 모두 상고법원 법률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음 ⇨ 우선 기본적인 입장 확인
 - 반대 논리에 따른 부정적 선입견 갖지 않도록, 접촉 및 설득전략 선제적으로 수립
 - [박기춘 의원] ① 박지원계로 분류 ⇨ 법원에 우호적인 박지원 의원을 통한 접촉 추진, ② 전형적인 정치인 스타일이라는 중론 ⇨ 지역구 현안(남양주지원 신축 등)을 매개로 한 정서적 접근도 중요

나. BH·법무부

1) 현황 ⇨ 직접적 이유 알 수 없는 반대 입장 고수

▣ BH ⇨ 핵심 보좌진의 親검찰 구성에 큰 변화 없음

- 현재로선 6월 임시국회까지 상황 변화 기대 어려움
- 신임 비서실장 취임
 - [이병기 비서실장] 1947년생, 경북고, 서울대외교학과, 주일대사, 국정원장
 - VIP에게 지근거리 정무적 조언할 수 있는 ‘이너서클’ 멤버
 - 법원 입장에서는 비검찰 출신 인물이라는 점에서 최악은 피한 인선



- 그러나 비법률가 출신이라는 한계로, 정책 추진 우선순위에서 상고법원 설치 문제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 있음 ⇨ 그에 따라 민정수석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 있음

●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법무비서관 입성 ⇨ 원만한 관계를 위한 창구 확보

- [곽○○ 법무비서관] 19○○년생, 연수원 ○○기, ○○고, 서울법대,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기획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1년 변호사 개업(김앤장)

- BH 내부의 진솔한 의견이나 요청 등을 접할 수 있는 계기 기대

▣ **법무부** ⇨ **반대 입장의 구심점**

● 각종 궤변적 논리를 늘어놓으며 전 방위적으로 방해 전술 구사

2) 대응전략

▣ ①BH가 주도하여 **정권의 성과업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상고법원안을 포함시켜 함께 추진하도록 함**

●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BH의 관심을 유도할만한 내용으로 구성함

- 관심 유도 ⇨ 최대 현안인 경제 관련 아이템이 적당함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직접 추진하도록 하여 강한 추진력을 갖도록 함

- BH가 ‘설득의 客體’가 아니라 ‘입법 추진의 主體’가 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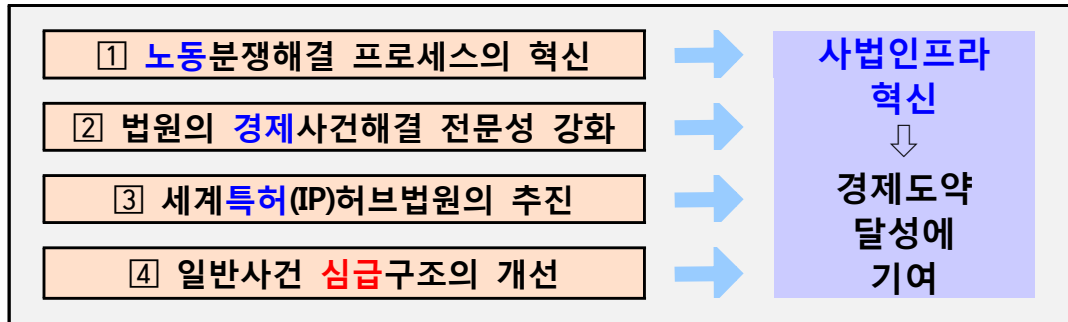
● 타이틀 네이밍 ⇨ 가칭 ‘경제도약을 위한 사법인프라 혁신플랜’

- 자칫 사법부 전반에 관한 개혁 논의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 ‘경제’ 관련 사안으로 한정하고, ‘반성적’인 ‘개혁(reformation)’이 아닌



‘창조적’ 인 ‘혁신(innovation)’ 으로 네이밍

● 논의 주제



- [착안점] 4대 부문 구조개혁 ⇨ 공공, 노동, 금융, 교육

● 상고법원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부각시켜 자료 제공

- 4월 말경 서울대 법경제학 전공 교수의 상고법원 도입과 경제적 이익 관련 연구결과 공표 예정 ⇨ 법정부적 차원에서 확대·발전시킬만한 정책 추진 포인트 추출제시

▣ ② **법무부와의 직접 담판 검토**

- 법무부장관 등과의 회동을 통해, 실질적 반대 이유를 파악하고 상호 의견 조율을 통해 간극을 최소화하며 입법 협조를 유인하는 방안 검토
- 현 법무부장관에 대한 BH의 신뢰 수준 감안할 때, 법무부의 협조는 BH의 동의 내지 묵인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일 수 있음

☑ **담판을 위한 각종 방안 예시**

▶ **압박 방안**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절차적 통제 방안, 체포영장제도 개혁 방안,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추진 방안,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신문과정에서의 필요적 참여 제도

▶ **회유 방안**

-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확대 방안,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 특성화법원 설치 방안,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방안,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 도입 방안



다. 언론 ⇨ 사법정책실 대응 추진

1) [현황] 상고법원 관련 언론보도 소강 상태

▣ 2월 임시국회 법안 상정 무렵까지 보도 양상

● 진보 언론 ⇨ 부정적 보도 경향 강화

- 일련의 시국·노동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YTN 해직 기자 사건 등] 선고 이후 부정적 기류 형성

● 보수 언론 ⇨ 일부 부정적 보도가 공식 입장으로 오인되어 보수 계층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최근의 부정적 보도 사례

▶ 조선일보 정○○ 칼럼 ⇨ 3회에 걸쳐 반대 견해 표명

- 2014. 10. 3. '제2대법원, 국민 지지 얻을 수 있을까'
- 2014. 11. 27. '요즘 판사들이 의원들을 찾는 이유'
- 2015. 1. 17. '상고법원과 삼권분립'

▶ 중앙선데이 ⇨ 최근 대법원의 '상고법원 홍보책자' 내용을 비판하는 기획 기사

- 2015. 2. 1. '국민은 대법 최종심 원해'

▣ 2월 중순 이후 유의미한 보도 발견 안됨

● 조선일보 2. 6.자에 이○○ 전 대한변협 회장 명의 기고문(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 실린 이후 찬반 입장을 다룬 기사 보이지 않음

● 법사위 정책토론회 실시, 사실심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출범 등 객관적 상황 소개 기사만 게재

2) 대응전략

▣ ① TV 방송을 통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

● JTBC에서 절찬리 방송 중인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썰전'에서 상고법원안을 토크 주제로 다루도록 추진



☑ JTBC의 '썰전'

-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각종 사회 현안을 주제로 출연진이 적나라하게 토론하는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 강○○ 변호사, 이○○ 교수 등 토론자로 출연
- 출연자들의 솔직한 입담으로 인기 구가

- 4월경 임시국회 법안 심사 무렵에 맞춰 **방송 추진** ⇨ 입법 추동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대
- 출연진인 강○○ 변호사 **접촉**을 통해 방송 시도
- **종합편성채널에 자주 등장하는 법조인 설득** ⇨ 방송에서 법원·법률 관련 이슈를 다루면서 **상고법원 관련 부정적 비평** 등이 **송출되지 않도록 사전 접촉·공략**

☑ 증편 출연 빈도수가 높은 법조인

▶ [여○○ 변호사] 채널A, MBN 등의 각종 뉴스에 패널로 출연

- 1958년생, 연수원 17기, 경북고, 서울법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변호사

▶ [최○○ 변호사] TV조선의 「TV로펌 법대법」 프로그램 고정 패널로 출연

- 1965년생, 연수원 22기, 휘문고, 연대법대, 대전지법/수원지법 판사, 2001년 개업, 서울변회 소속 개업 변호사

☐ ②대응 기고문 게재

- **신○○ 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명의 기고문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역임한 **상징성**이 있고, **학자**로서도 높은 **지명도**가 있음 ⇨ 여론 전반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 기대
- 중앙일보 **권○○ 사회부장**
 - 법조 관련 **깊이 있는 사실**로 저명 ⇨ **설득력과 전문성** 갖춘 기고문으로 상당한 **반향**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조○○ 교수** 명의 기고문
 - **한겨레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목표 ⇨ 진보 진영의 단일한 공식 입장이 상



고법원안 반대가 아님을 확인시켜 민변 등의 반대 목소리 잠재우는 효과

- 또한 조 교수는 SNS를 통하여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음 ⇨ 여론 전반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 기대

■ ③ 주요 인사 인터뷰 추진

- 김○○ 신임 서울변회 회장 등에 대한 법률신문 인터뷰

☑ 김○○ 신임 회장의 입장

▶ 상고법원안에 조건부 찬성 입장

-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상고법관 50명 내외 확보·외부 인사 참여, 상고법원 결정에 대한 특별상고 허용 등 몇 가지 전제조건 제시

- 기고문 게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여론 형성에 긍정적 효과 기대

■ ④ 前 대법관 일상 취재, 특별인터뷰

- 前 대법관의 일상을 취재하여 상고심 구조 개편이 불가피함을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방안

- 김○○, 양○○, 안○○ 前 대법관 등

☑ '실핏줄 터지도록 업무...' 대법관의 고단한 일상

▶ 2014. 11. 18. SBS 뉴스토리 ⇨ 박○○ 대법관의 일상 소개

3. 법원 내부 현황 및 대응 방안

1) 법원 내부 현황 점검 필요성

- 법관들의 상고법원에 대한 열망과 기대는 법률안 통과 필수 전제조건 ⇨ 내부 구성원의 응집된 결속 없는 외부 국면 타개는 어불성설

- 그러나 최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일부 법관들의 부정적 의견·비관론·무관심 분위기 감지

☑ 어느 법사위원의 전언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법원 모 부장판사가 말하기를, 모든 판사들이 상고법원 설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판사들은 아예 그런 정책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

☑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2. 2자 게시글 「상고법원안의 미래」**

“상고심 개편, 넘어야 할 산은?... 몇가지가 있다... 먼저, 3심제 아래에서 **3심을 대법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관념과 국민들의 인식은 그 자체로 헌법규범으로 승인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상고법원 판사가) 사실상 준대법관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없지 않고, 대법관들 역시 이들의 존재 자체를 탐탁치 않게 여길 우려도 있다... 이해하기 어렵고 일견 ‘뭉치?’라고 생각이 드는 제도는 도입하기 어렵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고 물었을 때 선뜻 답이 망설여진다면, **그 제도 역시 도입이 어렵다.**”**

- 이러한 법관들의 무관심 내지 부정적 의견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법관 사회에서조차 반대하는 정책이라는 뼈아픈 비판에 직면 ⇨ 법안 심사에 되돌릴 수 없는 결정타가 될 것임

☐ **일선 법관들의 분위기 점검** ⇨ **입법 추동력 고취 및 위험 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대응 방안 수립

2) [현황] ⇨ 최근 약 2주 동안 서울고법 등 수도권 법원 일부 판사들 **익명 의견 취합 결과**

☐ **상고법원에 대한 일부 지법 부장판사들의 인식**

- 상고법원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
- 인사 숨통을 트는 차원에서 상고법원 설치 희망
 - 법원장님의 재판 복귀 등으로 상충부가 짝 막혀 있다는 인식 팽배
- 상고법원 설치로 고등법원의 형해화 또는 위상 약화를 우려
 - 상고법원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사실오인 여부의 심리에 집중하며 파기환송률을 높일 것이고, 그런 만큼 고등법원의 마지막 사실심 법원이라는 위상 약화될 것으로 우려

☐ **상고법원에 대한 일부 단독·배석판사들의 인식**



- 대법원 기능의 정상화를 위하여 상고법원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정도로 인식
-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관심과 구체적 내용의 인식 정도가 낮음
 - 자신들의 재판업무와 인사에 미칠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봄
 - 다만 대법원과 상고법원 사이의 사건 구분, 상고법원의 재판연구관 구성, 하급심 강화의 구체적 방안 등을 궁금해 함
- 사실심 인원의 부족으로 사실심 업무에 과부하 걸릴 것을 우려
- 대법원이 아니라 상고법원의 재판연구관이 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법 있음
- 상고법원 설치로 법원의 관료화 심화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음
 -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이 적어짐에 따라 하급심의 소수 또는 다양한 목소리가 대법원에서 선언되지 못함에 따른 소수 또는 다양한 견해의 봉쇄 우려
-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국민 입장을 바라보는 일부 판사들의 시각**
 - 많은 국민이 상고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모른다고 생각
 - 대법관 1인당 미제 수 등의 강조가 국민에게 아래와 같은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는 조심스러운 견해도 있음
 - ‘대법관 지위에 있는 분들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
 - ‘대법관이 아니라 재판연구관 또는 법원 직원이 사건 처리를 하므로 실질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음’
 - ‘대법원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고 하여 일반 국민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은 없음’
 - 우리 사회의 평등의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관 증원론’이 국민에게 더 바람직한 안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봄
- **상고법원 설치 가능성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전망**



- 현재 법률안에 대한 심의 과정과 이후 절차에 대한 정보가 태부족
- 상고법원 설치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
- 판사들 사이에서 검찰의 반발 및 동등 대우, 기획재정부의 비협조 등이 상고법원 도입의 난관으로 언급되고 있음

3) 대응전략

▣ [총론] 관심도 제고+적극적 지원 분위기 확산+부정적 인식 제거

- 공감대 형성과 심정적 결속 강화 ⇨ 적전분열 현상으로 인한 입법 추동력 상실 방지
-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각 필요
 - 상고법원안의 좌절은 ‘사법부의 위상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결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추진의 불가피성과 긍정적 기대 효과에 대한 적극적 인식 제고 ⇨ 이를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one voice’를 낼 수 있도록 함

▣ [각론①] 법관 워크숍 등에서 제도 안내

- 각급 법원에서 4~5월경 개최하는 법관 워크숍에 행정처 심의관 등이 참여하여 상고법원안 개요, 추진 경과, 반대론에 대한 반박 논리 등 발제 후 토론
- 원외 워크숍의 편안한 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긍정적 공감대 구축
 - 대부분의 소속 법관들이 참여하고, 업무능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 경험 공유의 자리이므로,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는 효과 클 것임
- 일부 대규모 법원 워크숍에 우선 참여하여 반응 살핀 후 소규모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

▣ [각론②] 설문조사를 통한 홍보 및 의견분출 통로 제공



- 현재 진행 중인 법원문화연구반 제안사항 1차 검토 결과에 상고법원 관련 내용 추가하여 설문조사 실시
 - 3월 말까지 법원문화개선 정책 수립 후 4월 초 설문조사 실시 가능
 - 법원문화 전반의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사항에 상고법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의견 조사하는 형태 ⇨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부담 최소화
 -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자연스럽게 상고법원안을 소개하고, 법관들의 인식 수준을 체크할 수 있을 것임
 - 상고법원안에 대한 견해 표명 원하던 법관들에게는 적절한 의견 제시 기회 제공
- [각론3] 코트넷에 '상고법원 커뮤니티' 신설
- 희망하는 법관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고법원 관련 오픈 커뮤니티 개설
 - 상고법원 관련 자료를 체계화하여 일선 법관들에게 제공하고, 법관들 의견을 청취하는 정보 및 의견 소통 공간 창출
 - 법관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코트넷을 통해 일거에 집적된 정보 취득 가능 ⇨ 상고법원에 대한 관심 및 이해 고취에 매우 효율적
 - 커뮤니티에 Q&A 기능 추가 ⇨ 법관들의 의문점 해소, 오해 미연에 방지
- [각론4] 권역별 상고법원 설명간담회 개최
- 5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산하 법원의 대표성을 가진 법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하고, 행정처 심의관 등이 상고법원 관련 내용을 소개
 - 간담회 참여 법관들이 허브(HUB) 법관으로, 소속 법원에서 상고법원 전도사 역할 수행 기대
- [각론5]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논의 ⇨ 신중 검토 要



-
- 전국수석부장회의 직후인 3월 말경 개최되는 각급 법원 판사회에서 상고법원안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는 가능
 - 모든 판사가 참석한다는 점에서 공론의 장은 될 수 있음
 - 그러나 통상적인 판사회의 분위기상 소수의 부정적 의견이 전체 법관 의견으로 피력될 위험성 다분 ⇨ 종종 판사회의는 언론의 주요 표적이 되어 온 점에 비추어, 자칫 판사회에서의 일부 비판적 기조가 부정적 파급 효과를 증폭시킬 우려 있음 <끝>.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

1. 판결선고의 요지

▣ 서울고법 2014노762 내란음모 등

▣ 1, 2심 선고 결과 비교

● 공소사실별 유무죄 내역

공소사실		1심	항소심	
내란	선동	유죄	유죄	파기자판
	음모	유죄	무죄	
국보법 위반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유죄	유죄	
		이유무죄	이유무죄	
		무죄	무죄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별 양형 내역

피고인	인정 죄명	구형	1심	항소심
이석기	내란선동 국보법위반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이○○	국보법위반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조○○	국보법위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김○○	내란선동 국보법위반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김○○	국보법위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홍○○	국보법위반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한○○	국보법위반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2. 항소심 판단의 논리 요약

▣ 내란선동 : 유죄

● 피고인 이석기, 김○○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분반토론에서 논의된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물질적인



수단을 준비하고, 명령에 따라 이를 실행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추후 구체적인 준비,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즉시 이러한 준비에 나설 것을 강조함

- 선동의 상대방인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발언에 호응하여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할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으로 국가기간시설 타격, 폭탄의 제조 등까지 논의하다가 비록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각자 임무가 주어지면 목숨을 걸고 수행할 태세를 갖추자는 데는 공감함
- 피고인 이석기, 김○○이 구체적인 준비,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즉시 준비에 나설 것을 강조하였고, 위 회합 참석자들이 위 피고인들과 상명하복 관계에 있으며 위 발언에 적극 호응한 점 등 객관적인 상황을 근거로 선동의 상대방인 위 회합 참석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인정됨

■ **국가보안법위반 (문제된 2013. 5. 12. 회합에서의 찬양·동조) : 유죄**

- 위 회합이 반전평화활동의 진행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볼 수 없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전시에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 **RO 조직의 실체 : 인정되지 않음**

- 지하혁명조직 RO라는 단체의 결성 시기·과정과 그 조직체계, 위 130여 명의 단체 가입 및 폭동 준비 등 단체의 지침에 따른 활동 내역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음
-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는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죄 등 별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실



- 이에 가입한 경우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함 (이는 이 사건 내란음모나 내란선동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보다 무거움)
- 따라서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핵심 제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은 있으나, 그 진술을 믿는다고 해도 진술내용 자체가 조직의 강령, 성격, 조직명, 구성원 및 조직체계에 관하여 ‘의견 내지 추측’에 불과. 객관적 증거 없음
- 다만,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조직화된 다수인이 내란범죄 실행에 합의하였다고 인정되면 내란음모죄는 성립함.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각 회합 참석자들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원들 중 피고인 이석기를 정점으로 하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므로, 어느 정도 조직화된 다수인으로서 내란음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내란음모 : 무죄

- 음모죄의 성립요건인 ‘범죄 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참조)
-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이 사건 각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까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



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에 호응하여,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의 준비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구체적 준비방안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움

3.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에 관한 항소심 판단에 대한 검토

제87조(내란)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선동과 음모는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시간적으로는 선동 → 음모의 순서를 가짐**

■ 내란선동의 의미와 인정요건

-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에 대하여 고무적인 자극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대법원 74도3510 판결)
- 선동은 타인에게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
- 주관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동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선동행위로 인하여 선동의 상대방이 그 범죄행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까지 인정되어야 함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 **이 사건에서 이석기, 김○○은 130여명의 회합원들에 대하여 폭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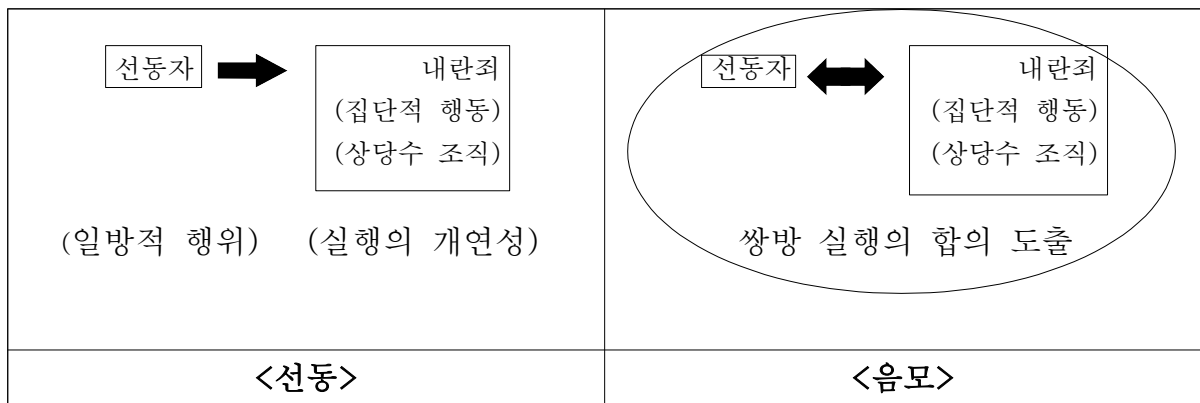


실행을 부추김 (선동 유죄 인정)

■ 내란음모의 의미와 인정요건

-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협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 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모’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된 본범죄의 성질을 고려하여야 함
- 내란죄는 기본적으로 집단적 범죄임
 -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선동과 음모의 차이 (선동 인정되더라도, 음모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동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부추기는 것임 (본범죄를 스스로 실행할 필요가 없음)



- 음모는 본범죄(내란죄)를 실행에 옮길 사람들 사이에(선동자와 피선동자 사이에) 실제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에 옮길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내란죄 자체가 상당수의 집단이 함께 저지르는 범죄임

■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전제 하에서,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엄격한 증거능력 판단을 통과한 증거만에 의한,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음모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임**

- 비록 RO의 존재가 형사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조직화된 상명하복 관계는 인정
- 강연의 상대방(직원)들이 이석기 등의 발언내용에 공감하고, 추후 발언내용에 따라 실행에 이를 개연성도 있음
- 다만, 위와 같은 추상적, 일반적 합의를 넘어서, 논의와 공감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실행행위나 역할의 분담(비록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윤곽은 특정되어야 함)을 하기로 합의되었음이 형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

4. 정당해산심판 사건과의 관계 검토

1) 1심 판결과의 관계

- **물론, 1심 판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통합진보당 측에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음**
 -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점
 - 13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RO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그 자체가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입증 가능
 - 내란음모에서의 직원들 사이의 ‘구체적 합의’ 를 인정하지 않은 점



▣ 그러나 1심 판결은 어차피 상급심에서 인정되어야만 의미가 있음

2) 항소심 판결의 내용적 측면 (정부측에 유리한 판시내용)

▣ 항소심 판결은 엄격하게 법리에 따라 해석한 결과이지만, 정당해산심판에서 정부 측에 유리한 판시내용이 많음

● 내란선동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함

- 이석기와 김○○의 선동행위 측면
- 선동의 상대방 측면 :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강연 내용에 공감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행위의 실행을 결의하고, 나아가 이를 실행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

● 상명하복에 의한 조직적인 구성의 인정

- 비록 특정 강령과 조직의 ‘RO’ 실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원들 중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고, 그들 사이에는 피고인 이석기를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 (내란음모 주체의 가능성도 있음)

● 국가보안법위반 인정

- 단순한 개인의 서적보유 등의 행위가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이름을 걸고 한 이 사건 회합 자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각 행위를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것임
- 한 두명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간부진 다수인 7명의 피고인 모두가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유죄

● 내란음모에 대한 형법상의 무죄를 판시하면서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판시

-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내란을 음



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발언에 호응하여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의 폭력적인 방안까지 논의한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형 선고

-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또는 통합진보당 간부들임에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음
- 법리적으로는 법정형이 같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중 하나가 무죄선고되었지만, 양형으로는 1심의 12년 형 중 9년을 선고하였음

▣ 역설적으로 내란음모죄를 무죄선고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이념적으로 편향된 결과가 아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임

3) 정당해산심판과 형사판결의 차이점 주목할 필요

▣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과 정당의 위헌심판은 소송의 목적과 입증의 정도가 전혀 다름

- 정당해산심판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법 55조),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헌법재판소법 40조)
- 형사책임 : 기소된 ‘피고인’의 구성요건 해당성 심사, 엄격한 증명 (형사상 유죄인정을 위해서는 개연성을 넘어선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명이 필요함)

▣ RO의 실체 여부 및 내란음모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는 엄격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음

-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직접 제약하는 형사소송에서는, 같은 쟁점에 관



하여도 엄격한 증거능력과 증명력(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필요

- 동일 쟁점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경우에는 개연성의 원칙에 따라 판단 가능
- **법리적인 결론 뒤에 있는 사실적인 판단과 재판부의 상황인식이 충분히 판결에 드러나 있음**
 -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는, ‘내란음모죄’ 자체가 형사적 법리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을 뿐, 상당한 조직성과 결집력을 가진 상명하복 체제의 조직의 존재 자체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목적성, 조직의 상부계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선동행위, 조직원들 사이의 공감대와 실행행위의 개연성 등 사실적인 영역에 관하여는 충분한 사실적인 판단을 하였음
 -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들 및 조직원들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해악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한 바 있음



이원화 관련 통계 및 공론화 관련 내부 반응 분석

2017. 2. 2.

법관인사위원회TF

I. 통계(2011-2016 서울고등법원)

1. 전제

1) 기간

▣ 인사영향이 적은 기간별로 분석

연도	2011	2012	2013
기간	2011. 2. 28. ~ 2012. 2. 24.	2012. 2. 27. ~ 2013. 2. 22.	2013. 2. 23. ~ 2014. 2. 23.
연도	2014	2015	2016
기간	2014. 2. 24. ~ 2015. 2. 22.	2015. 2. 23. ~ 2016. 2. 21.	2016. 2. 22. ~ 2016. 12. 31.

2) 분석대상 통계항목

▣ 비율적 통계

● 민사/형사/행정 공통

- 처리율 : 처리건수 ÷ 접수건수 // 상고율 : 상고건수 ÷ 판결건수

- 실질파기율 : 상고심 파기건수 ÷ (상고심 기각건수 + 상고심 파기건수)

■ 2011년 ~ 2015년까지 통계가 有의미(2016년 선고사건은 아직 상고심 미처리사건이 많아 현 시점에서 통계적 의미 부여가 어려움)

● 민사/행정 재판부

- 종국률 : (처리건수 - 상고건수) ÷ 처리건수

- 미제분포지수 : 6개월 이내 사건점유율 + (1년 이내 사건점유율 * 0.9) - 2년 이내 사건점유율 - (2년 초과 사건점유율 * 2)

● 민사재판부

- 실질조정화해율 : 실질조정화해건수 ÷ 실질처리건수



■ 실질처리사건의 주요 구성요소 = 실질판결건수 + 실질조정화해건수

▣ 양적 통계

● 비율적 통계와 아울러 실제로 재판부별로 처리한 사건 등의 양도 함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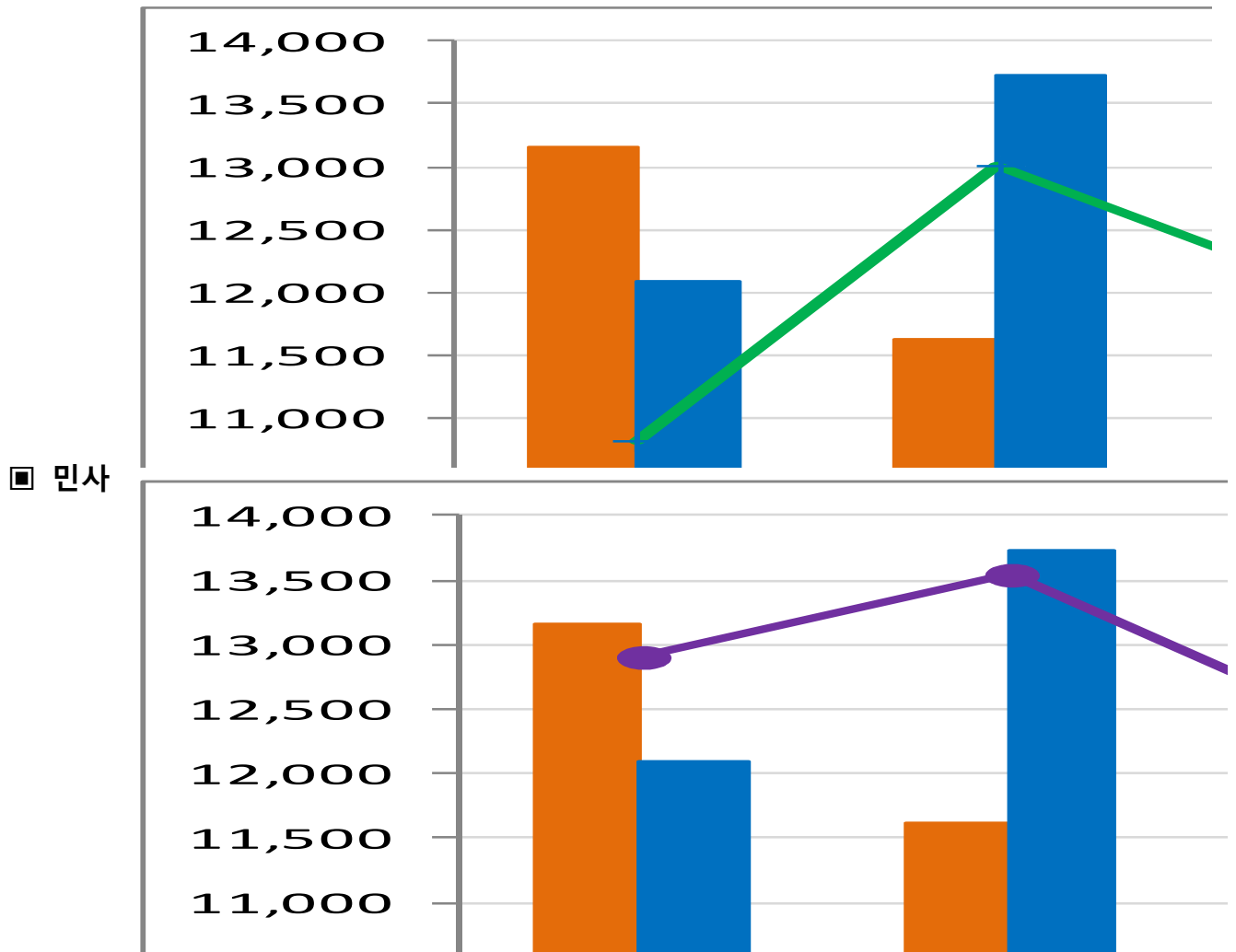
2. 최근 10년간 전체적 추이(서울고법)

기간	민사본안					행정보안 ¹⁾			형사공판(인원수)		
	접수	처리	미제	부별처리	처리율	접수	처리	처리율	접수	처리	처리율
07.2.21.~08.2.24.	13,161	12,088	11,379	456	91.8	3,570	3,763	105.4	4,343	4,274	98.4
08.2.25.~09.2.22.	11,618	13,727	9,270	482	118.2	3,871	3,805	98.3	4,966	4,986	100.4
09.2.23.~10.2.21.	12,537	13,162	8,645	432	105.0	4,251	3,553	83.6	5,144	5,087	98.9
10.2.22.~11.2.27.	12,573	12,502	8,716	419	99.4	4,812	4,610	95.8	5,331	5,394	101.2
11.2.28.~12.2.24.	10,777	11,376	8,117	391	105.6	4,390	4,969	113.2	5,572	4,774	85.7
12.2.27.~13.2.22.	10,760	10,684	8,189	351	99.3	4,095	4,056	99.0	6,270 ²⁾	5,911	94.3
13.2.23.~14.2.23.	11,571	10,637	9,124	350	91.9	4,237	4,133	97.5	5,184	5,964	115.0
14.2.24.~15.2.22.	11,412	11,236	9,299	365	98.5	4,381	4,215	96.2	5,563	5,171	93.0
15.2.23.~16.2.21.	10,922	11,496	8,732	362	105.3	4,572	4,395	96.1	4,991	5,295	106.1
16.2.22.~16.12.31.	9,854	10,798	7,788	329	109.6	4,805	4,941	102.8	4,992	4,651	93.2
16.2.22.~17.2.19. ³⁾	11,463	12,458		380	108.7						

1) 2015년 및 2016년의 접수건수 증가는 난민사건 증가에 기인함

2) 2012년의 접수건수 증가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를 합의부에서 처리하게 되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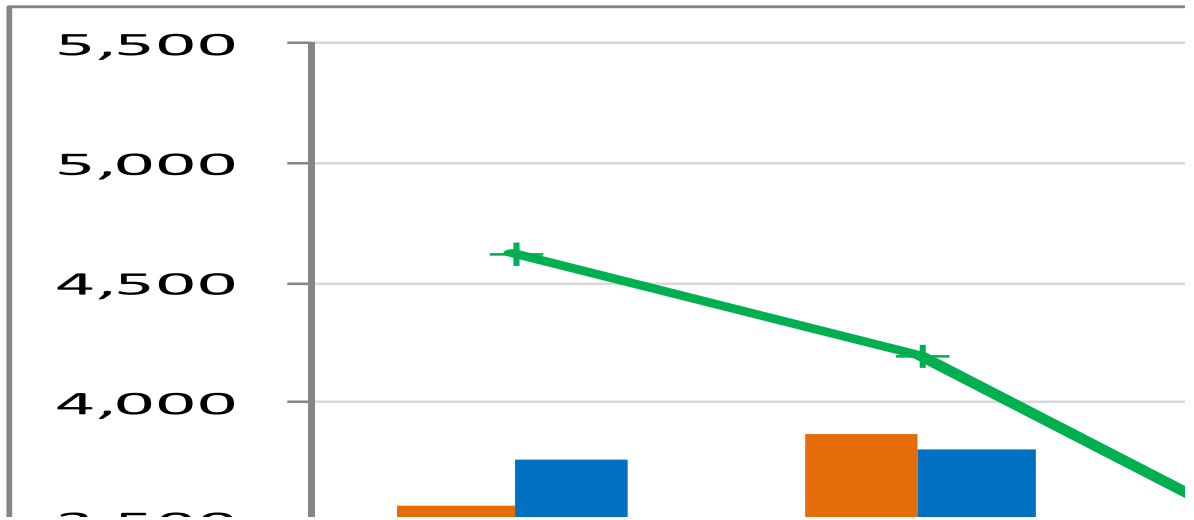
3) 2016. 2. 22. ~ 2016. 12. 31. 수치를 기준으로, 2014년 월별 접수, 처리 등 현황을 고려하여 환산한 예상치



- 접수건수 : 2012년까지 감소하였다가 소폭 증가하는 추세
- 처리건수
 - 전체 : 2013년까지 감소하다가 2014년부터 증가하는 추세
 - 재판부별 :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소폭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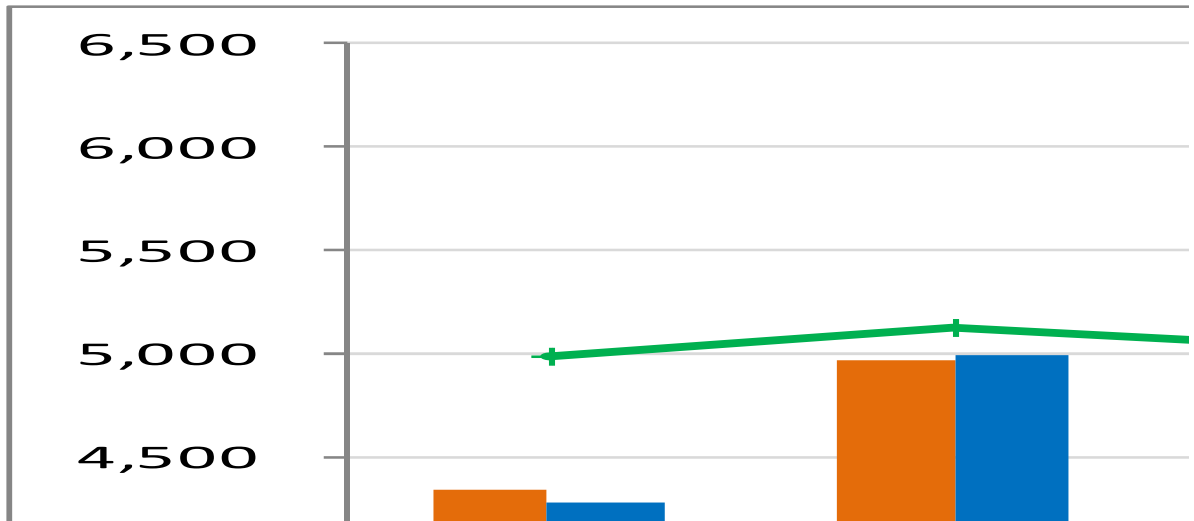


▣ 행정



● 2012년 접수/처리건수 하락 이후 계속적 상승 추세

▣ 형사



● 2012까지 접수/처리건수가 상승하다 이후 하락 추세



3. 민사재판부

1) 연도별 재판부 수(항고부 제외)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A형 재판부	4	10	15	22	26	26	103
B형 재판부	26	22	16	10	6	8	88

2) 연도별 추이

▣ 비율적 통계[단위: %]

연도	처리율		상고율		증국률		실질파기율		항소기각률		실질조정화해율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2011	114.8 ⁴⁾	108.9	42.8	41.5	70.2	72.0	10.8	12.7	54.8	61.2	20.1	22.1
2012	96.0	101.3	44.7	43.8	67.6	69.6	13.3	16.6	57.5	56.7	17.9	20.1
2013	92.8	93.7	46.1	46.1	65.2	69.6	13.6	14.3	51.7	55.3	14.8	24.4
2014	100.9	102.0	44.3	41.1	67.4	70.4	9.6	9.3	55.3	58.6	15.9	17.1
2015	106.3	105.9	41.0	39.0	69.3	70.5	6.3	5.3	56.4	58.5	14.8	13.8
2016	113.4	97.9	35.5	35.9	73.5	74.4	7.6	5.3	55.2	59.3	16.2	16.2

▣ 재판부당 양적 통계[재판부별 평균, 가사부 제외 (단위: 件)]

연도	접수		처리		판결		상고		파기		조정화해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2011	344	358	396	387	279	262	117	109	13.7	14.0	66	74
2012	368	352	350	352	256	244	115	105	15.6	16.1	54	61
2013	371	376	350	357	264	231	123	107	16.4	14.8	45	80
2014	364	342	363	348	267	252	118	102	10.7	9.4	51	51
2015	341	320	361	339	270	257	111	100	6.1	4.8	46	41
2016 ⁵⁾	295	326	335	315	250	222	88	80	3.5	2.4	48	44

▣ 사건관리, 사건처리 속도

- 4) A형 재판부 우위는 파란색 음영, B형 재판부 우위는 노란색 음영. 통계적 의미가 없는 항목(표본 재판부가 1개 뿐인 경우 또는 상고심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2016년 선고 판결에 대한 실질파기율 관련 지수)은 어느 쪽에도 음영 없음
- 5) 2017년 1, 2월에 해당하는 건수가 빠져 있어 수치가 낮음



연도	평균 처리일수		평균 기일수		미제분포지수 증감(가사부 제외)*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2011	267	259	3.95	4.01	-12.6	-3.9
2012	260	270	3.91	4.16	1.4	0.9
2013	269	267	3.89	4.05	-9.0	3.0
2014	277	297	4.11	4.31	-7.0	-1.7
2015	282	296	4.16	4.12	-4.7	-7.3
2016	266	301	4.04	4.10	1.8	4.7

* 2011, 2013, 2014, 2016 년 모두 B형 재판부의 미제분포지수가 각 해 始點에서는 A형 재판부보다 낮았다가 終點에서 역전되었음

3) 분석

■ 사건처리의 양적 측면: A형 재판부가 더 많은 사건 처리

- 처리율: 당초 A형 재판부가 낮은 추세였으나, 2015년부터 B형 재판부를 상회
 - 특히 A형 재판부의 처리율은 2014년 이후 계속 상승 추세
 - 다만, 처리율은 재배당⁶⁾에 따른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
 - 재배당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재배당된 사건이 처음부터 재배당 후 재판부에 배당된 것처럼 처리율 계산 → 처리를 많이 하여 사건을 재배당을 받은 재판부는 재배당 받은 사건이 접수건수에 포함되어 많은 처리건수에도 불구하고 처리율 하락
- 재판부별 처리량
 - 2012, 2013년도에 B형 재판부보다 미세하게 낮은 것을 제외하면 A형 재판부의 재판부별 처리건수가 B형 재판부를 상회하고 있고, 그 차이도 뚜렷함
 - 재판부별 판결건수는 A형 재판부가 B형 재판부를 상회하는 패턴이 명확하게 보이고, 조정·화해건수도 2015년부터 B형 재판부를 상회하고 있음
 - 접수건수 하락 추세에도 재판부별 처리건수는 유지하고 있음

■ 사건처리의 질적 측면: 최근 B형 재판부 우세 추세

- 당사자의 승복률: 당사자의 재판에 대한 승복률이나 만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상고율과 종국률 모두 A형 재판부가 B형 재판부보다 열세
- 실질과기율: 당초 A형 재판부가 낮은 추세였으나, 2014년부터 B형 재판부를 상회
 - 다만, 실질과기율이 높은 재판부나 판사는 B형 재판부이거나 그 소속인 경우가 많음

6) 매년 접수건수가 재판부별로 꽤 편차가 있어 재배당, 소위 ‘키재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실질 파기율이 높은 재판부 또는 판사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재판부	A형		1	2		1	4
	B형	2	4	1			7
	합계	2	5	3		1	11
판사 (가주심 포함)	A형		4	4	1	1	10
	B형	3	7	7	1		18
	합계	3	11	11	2	1	28
판사 (가주심 제외)	A형		3	3		1	7
	B형	3	7	7	1		18
	합계	3	10	10	1	1	25

* 실질파기율이 20% 이상이거나 해당 연도 평균의 2배 이상인 경우(판사는 파기건수 5건 이상)

- 반론) 2014년 이후 선고사건은 2013년 이전 선고사건보다 상고심 판단이 적게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은 사건은 파기율이 높음 → 2014년 이후 실질파기율이 높은 재판부 또는 판사의 숫자 상승 예정 → 2014년 이후에는 A형 재판부가 압도적으로 많아 실질파기율이 높은 A형 재판부 또는 소속 판사도 많이 발생할 것
- 재반론) 2013년의 경우 A형 재판부(15개)와 B형 재판부(16개)의 숫자가 비슷함에도 실질파기율이 높은 판사는 B형 재판부에 집중되어 있음

▣ 사건관리 및 사건처리 속도 측면

- A형 재판부의 평균 처리일수와 기일수가 B형 재판부보다 적음
- 많은 처리량과 결합하여 보면, A형 재판부가 많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기일수도 적어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 방향과도 어울림
- 다만, 이와 상반되는 해석도 가능함
 - A형 재판부의 미제분포지수 증감 추이⁷⁾가 B형 재판부보다 좋지 않음 → B형 재판부와 비교하여 미제기간이 짧은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였고, 이것이 종국된 사건의 평균 처리일수 및 기일수 단축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미제분포지수의 사후적 왜곡 가능성 고려 필요 ← 처리율처럼 미제분포지수 역시 재배당된 사건이 처음부터 재배당 후 재판부에 배당된 것처럼 계산
 - 신설부는 미제분포지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으나, 신설부를 제외하여도 A형 재판부의 미제분포지수 증감 추이가 좋지 않은 경향은 마찬가지

7) 미제분포지수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져야 좋은 것인데(장기미제 사건의 처리), A형 재판부의 경우 그 추이가 좋지 않음



- 낮은 항소기각률(≒ 잦은 1심 판단 변경)은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과 어울리는지 의문

▣ 평가

- A형 재판부가 B형 재판부보다 사건 처리가 더 많고, 처리율도 지속적 상승 중
 - 처리일수와 기일수도 적어, 많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A형 재판부의 미제분포지수 증감 추이가 B형 재판부보다 좋지 않다는 비판 가능함
- 다만, 당사자의 승복률이나 만족도를 나타내는 종국률과 상고율 모두 B형 재판부보다 수치가 좋지 않고, 실질파기율은 B형 재판부보다 우세했으나 2014년 이후 열세로 반전 ⇨ 당사자와 상고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A형 재판부의 “높은 처리량, 질적 통계 약화”는 일반적인 관념과는 다름
 -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는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으나, “우수하고 정륜 있는 법관에 의한 양질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기대” 측면에서는 우려스러운 측면 존재

4. 행정재판부

1) 연도별 재판부 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A형 재판부	2	4	6	8	9	9	38
B형 재판부	9	7	5	3	2	2	28

2) 연도별 추이

▣ 비율적 통계 [단위: %]

연도	처리율		상고율		종국률		실질파기율		항소기각률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2011	115.8	112.6	55.5	56.7	51.5	50.6	5.5	7.4	79.7	76.3
2012	101.9	99.5	55.8	55.0	51.7	50.6	5.7	8.1	76.6	79.8
2013	98.3	96.6	53.9	53.5	54.1	52.7	4.8	7.5	78.6	79.5
2014	97.7	102.9	55.0	56.0	53.7	50.9	4.9	6.5	75.7	78.0
2015	96.4	95.1	54.9	55.1	53.6	51.6	3.4	4.6	74.8	79.6
2016	102.3	105.2	57.1	57.9	49.9	49.7	1.9	1.3	80.9	84.2



▣ 재판부당 양적 통계 [재판부별 평균 (단위: 件)]

연도	접수		처리		판결		상고		파기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2011	383	403	443	454	388	395	215	224	11.5	15.9
2012	376	383	383	381	332	342	185	188	10.3	14.7
2013	378	394	372	381	317	336	171	180	7.8	12.6
2014	395	405	386	416	325	365	179	204	8.0	12.0
2015	405	464	390	441	330	388	181	214	5.4	9.0
2016	434	449	444	472	390	411	223	238	2.1	1.5

▣ 사건관리, 사건처리 속도

연도	평균 처리일수		평균 기일수		미제분포지수 증감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2011	227	242	2.25	2.56	-5.84	2.85
2012	233	228	2.68	2.57	0.09	-5.77
2013	237	241	2.64	2.52	-5.25	3.65
2014	261	226	2.70	2.64	0.59	-7.79
2015	244	194	2.58	2.26	-6.10	0.56
2016	224	200	2.39	1.99	3.59	0.08

3) 분석

▣ 사건처리의 양적 측면

- 처리율: 당초 A형 재판부가 높은 추세였으나, 2014년부터 우열을 가리기 힘들
- 재판부별 처리량
 - A형 재판부의 재판부별 접수, 처리, 판결건수가 적고, 그 차이도 뚜렷함

▣ 사건처리의 질적 측면

- 당사자의 승복률: 상고율과 종국률 모두 A형 재판부가 B형 재판부보다 우세
 - A형 재판부의 항소기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율이나 종국률이 양호한 것은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은 재판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실질파기율: A형 재판부가 낮은 추세 계속 → 보다 정확한 재판의 징표
 - 또한 실질파기율이 높은 재판부나 판사는 B형 재판부이거나 그 소속인 경우가 많음



<실질 파기율이 높은 재판부 또는 판사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재판부	A형						0
	B형		2	2			4
	합계		2	2			4
판사	A형	1	1			2	4
	B형	3	5	2		1	11
	합계	4	6	2		3	15

* 실질파기율이 10% 이상이거나 해당 연도 평균의 2배 이상인 경우(판사는 파기건수 5건 이상)

▣ 사건관리 및 사건처리 속도 측면

- A형 재판부의 평균 처리일수와 기일수가 B형 재판부보다 많음
- 한편, B형 재판부의 많은 처리량과 결합해 보면 B형 재판부가 많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B형 재판부의 높은 항소기각률, 적은 기일 수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 방향과 어울린다고 보임

▣ 평가

- B형 재판부가 많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건처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
- A형 재판부는 당사자의 승복률이나 만족도가 높고, 상고심의 입장에서 보아도 정확도가 높은 재판을 하고 있음 → 사건처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우위

5. 형사재판부

1) 연도별 재판부 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A형 재판부	1	4	6	7	9	8	35
B형 재판부	11	8	6	5	3	4	37

2) 연도별 추이

▣ 비율적 통계[단위: %]



연도	처리율		상고율		실질파기율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2011	92.2	84.9	43.9	43.6	16.4	5.7
2012	93.0	94.6	45.1	43.0	4.4	2.7
2013	114.5	115.6	49.4	39.5	2.0	2.9
2014	92.7	93.4	41.1	43.0	4.8	6.2
2015	106.3	105.3	43.2	46.8	3.8	5.2
2016	90.4	99.2	38.5	44.5	1.0	1.6

▣ 재판부당 양적 통계[재판부별 평균 (단위: 件)]

연도	접수		처리		판결		상고		파기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2011	435	503	401	427	387	414	170	180	22.0	7.8
2012	548	545	510	516	484	500	218	215	7.5	4.3
2013	444	421	508	486	489	466	242	184	3.8	3.8
2014	457	472	424	441	407	422	167	182	5.6	7.6
2015	419	407	446	428	415	391	179	183	4.7	6.3
2016	426	395	385	392	359	374	138	166	0.5	1.0

3) 분석

▣ 전제

- 형사재판부는 무더기 상고, 중요사건 배당 시 배당 중지 등에 따른 통계의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

▣ 사건처리의 양적 측면

- 처리율: A형 재판부가 미세하게 우위에 있음
- 재판부별 처리량: 우열을 가리기 힘들
- ⇨ 특정 재판부가 많은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기 어려움

▣ 사건처리의 질적 측면

- 상고율: 2014년 이후 A형 재판부의 상고율이 양호하나 상고율은 양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낮은 상고율을 양질의 재판의 표지라고 보기는 어려움
- 실질파기율: 2013년 이후 A형 재판부가 낮은 추세가 계속됨 → 보다 정확한 재판

▣ 평가

- A형 재판부가 실질파기율 측면에서 우위에 있어 보다 정확한 재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통계에서는 어느 한 쪽이 특별히 우수하다고 볼 만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음

6. 종합적 평가

▣ 통계상 A형 재판부와 B형 재판부의 우열을 뚜렷하게 가리기 어려움

● 민사재판부

- A형 재판부가 B형 재판부보다 사건을 더 많이 처리하고 있고, 처리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처리일수와 기일수도 적어, 많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
- 다만, 종국률과 상고율은 B형 재판부보다 좋지 않고, 실질파기율은 B형 재판부보다 우세했으나 2014년 이후 열세로 반전 → 당사자와 상고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 가능

● 행정재판부

- B형 재판부가 많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건처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
- 한편, A형 재판부는 상고율, 종국률 및 실질파기율에서 우위(당사자의 승복률이나 만족도가 높고, 상고심의 시각에서도 정확도가 높은 재판)

● 형사재판부

- 실질파기율에서만 A형 재판부가 B형 재판부보다 우수한 경향이 발견되고, 나머지 통계에서는 어느 한 쪽이 특별히 우수하다고 볼 만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음

▣ 두 가지 견해 대립

- ① A형 재판부 비판론 : A형 재판부에 우수하고 경륜 있는 법관이 장기간 배치되어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재판연구원이 투입되었으면, B형 재판부보다 상당히 우수한 통계가 나와야 한다는 견해
- ② A형 재판부 옹호론 : 실질적 3인 합의를 하는 A형 재판부는 일정 정도의 효율성 저하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B형 재판부의 통계가 명백하게 좋아야 할 것인데, 통계상 A형 재판부가 B형 재판부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견해



II. 이원화 운영방향 공론화 관련 내부 반응 분석

1. 내부 반응 분석

1) 법관 사회의 전반적 인식

▣ '정책 결정 연기 내지 보류'를 '이원화 제도의 枯死'로 받아들이고 있음

- 차기 인사권자가 이원화 전면실시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이미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

- 2016년 정기인사에서 23기 고법판사 중 일부만 고법부장으로 보임되고, 탈락한 고법판사가 즉시 사직하자 (기존 이원화 공고화 모순되지 않음에도) 이러한 인식이 전고해짐

- 고법판사의 지방 근무 역시 이원화 제도 최초 공지와 모순되는 것이 아님에도 폐지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음

- 당사자인 고법판사 입장에서는 고법판사의 (현실적·단기적 측면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침해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충격이 크고, 폐지는 불가역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 원로법관제도를 고법부장 유지 및 이원화 폐지를 전제로 한 제도로 해석하기도 함

▣ 차기 인사권자가 최종 결정할 것이니 기다려 보자거나, 최근의 인사제도 변화가 이원화 최초 공지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법관은 소수임

-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견해임에도 이를 외부로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

▣ 중요한 인사정책이 의견수렴 및 공론화 절차 없이 폐지 내지 대폭 수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비판의 목소리 높음

- 고법판사들 본인이나 인접 기수 법관들은 물론 위 제도와 직접 관계없는 단독·배석판사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에 관하여는 문제의식이 큼

- 특정 범위 기수뿐만 아니라 전 기수에 걸쳐 불만을 갖는 이슈가 됨 ⇨ 비판적 법관이 언론 및 정치권을 통해 문제제기할 위험성도 증대

2) 2017. 1. 31. 고법부장 인사 직전 최근의 구체적 반응

▣ 2016. 2. 고법부장 인사 직후 반응

☑ '이제 1, 2심 이원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본글에 대한 댓글

- ▶ 평생법관제에 우선순위가 주어져 있는 듯 합니다. 평생법관제를 위하여 고등법원으로 복귀하시는



원장님을 위한 고등배석판사가 필요하죠. 얼마 전 있던 인사에서 고법판사를 (많이) 선발하지 않았고, 곧 있을 판사 인사에서 고법판사들 일부가 지법부장으로 나오면 그 자리는 고법배석이 채우겠죠. 점점 1,2심 이원화는 물건너가는 듯. 안타깝네요.

그리고 지금의 평생법관제는 고등부장 이상에만 적용되는 듯 합니다. 지법부장으로 계속 법원에 남아계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이 분들 각급 법원에서 눈치밥 드시고 계신 것 같아 안스럽습니다....

▶ 고법원장 하시던 분이 지방부장겸임으로 내려오시는 걸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23기에서 다수의 고법부장 승진이 있는걸로 보아 진정한 대등부(고등부장 3인) 구성도 기대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떨지요?

▶ 고등법원장 출신이 지방으로 내려가는것은 배려해주는거죠 **판결은 안써도 되고 차량 등 대우는 그대로 하고**...지방에 오래 남아계신 분들은 가정법원장 자리 주고 있네요~

▣ 2016. 12.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비판하는 경향신문 기사에 대한 반응

☑ **강력한 인사권으로 인해 무오류의 대법원장이 되었다는 취지 기사 중 인사 이원화 관련 부분**

▶ “대법원이 최근 대법원장의 강력한 인사권을 복원하는 인사 방침을 공식화했다. 역사를 되돌리는 일이다. 앞서 2010년 국회는 대법원장의 지나친 인사권을 해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대법원장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일부를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시키고, 이들을 다시 추려 대법관에 제청하면서 법관들을 줄 세우는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외부의 압력이 강해지자 2011년 대법원은 개혁 요구를 일부 반영해 개선안을 만들었고 올해로 시행 5년째로, 과도기였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을 열 달 앞두고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판사들은 자신들의 인사 문제라 발언을 주저하고 있으며, 행여 내년 2월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까 숨죽이고 있다.”

☑ **위 기사에 대한 댓글 중 법관 인사 이원화 관련 부분**

▶ **고등부장제도 폐지를 무산시키려고 애쓰는 것 보면 고등부장제도를 통한 인사권이 영향력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를 위한 각종 행정처, 연구관 등 발탁제도도 그렇고.

▶ 최근 인사 관련 행정처 공고의 어느 부분이 '백지화'로 읽힐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드네요. 양승태 대법원장님 재임 시절에 이원화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직전에 스톱되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들었던 의문이긴 하지만, **특정한 기수 이상으로만 구성되는 고등법원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32기 이하의 고법판사로 원칙적으로 보임되지 못하면, **고등법원의 고령화와 보수화도 우려됩니다.** 제도 초기에는 좋은 판결이 많이 나왔지만, 제도가 지금 방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 **적어도 2009 사법개혁안이 폐지되려면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론과정 및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제도의 내용을 떠나 절차적으로 이게 맞는 거란 생각은 안 듭니다.

▶ 또 고법원장까지 마치신 분들이 1심으로 내려오는 건 외국 사례에서도 그렇듯 특별히 이상해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원화 백지화와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이원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라**



도 정년 근처의 고등부장들의 1심 복귀는 원활한 고법판사 수급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고등법원은 '고법판사'가 아니라, '복귀 법원장'으로 가득 차겠죠. 게다가 그 분들이 언제까지 판결을 쓰실 수 있을까요? 연말 어느 모임에 갔더니, 고등부장님들 사이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생각보다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 강화 내지 백지화 등으로 연결시키기는 다소 멀게 느껴집니다.

▶ 원로법관제도의 문제점은 고법지법 이원화제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고법판사제도도 그들이 퇴임할 때까지 직위를 고정시켜 고등인사 공백을 최소화해서 지금 같은 고등부장승진제를 최대한 열어지게 만든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공석을 만드는 건 문제죠. 그리고 애초에 고법판사도 퇴임 시까지 고등에 계속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고등법원장님들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건 고등차원에서 해결해야죠. 그게 아니라 사법개혁을 폐지하려면 이런 점을 충분히 설득해서 공식적으로 해야지 이런 식은 판사들의 사법행정 방법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 '이원화'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의견이 나뉘는 듯 하네요. 이원화는 1, 2심 인사 순환 교류로 인해 항소심에서의 근무기간이 짧아지고 이로 인해 재판부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등 충실한 재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임 때까지 직위를 고정시킨다'는 것과 원로법관제도가 배치되는지 의문입니다. 고등부장으로 빈 자리를 채우면 배치되겠지만, 고법판사로 그만큼 채운다면 얼마든지 이원화와 양립할 수 있습니다. 고법판사든 고등부장이든 내려오고 싶으면 내려오게 해주는 것이 맞지, '절대 내려올 수 없어'라는 것이 이원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근데 그럴 경우 기존 지방부장 고등부장으로 뽑는 제도와 달라지는 차이는 뭐죠? 지방단독들이 고등배석으로 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만 유효한가요? 솔직히 고법판사가 원하면 지방부장으로 내리고 그 자리를 다시 지방부장으로 채우면 다시 순환될 것 같은데요. 고등/지법 이원화의 핵심은 고등인사가 지방인사로 내려오지 않는데 있는 것 아닌지요. 그리고 고법/지법 이원화가 항소심 근무기간 짧아지고 재판부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문제점 외에(이건 사실 지방법원에서든 문제입니다), 사법 관료화 방지도도 방점을 찍고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닌가요?

▶ 어차피 과거와 같은 대규모 순환은 불가능합니다. 몇몇 내려오겠다 분들(건강 등 기타 이유로 못하겠다는데, 못 내려오니 나가라고 할 순 없지 않나요?) 허용해도 그 숫자는 미미 하죠. 원로법관제 도입해도 1년에 몇 명 내려오실까요? 아마 내년에 많아야 대상자 1~2명일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도 연간 10명 내외겠죠. 그 정도가 이원화의 근간을 흔들진 못할 겁니다.

▶ 2년짜리 고등법원 배석판사가 대부분 없어지고, 유사한 경력자로 합의부가 구성되는 게 이원화의 가장 큰 장점이죠. 전 원로법관제가 그 핵심을 건드리는 걸로 보이진 않네요

▶ 암튼 이 기사와 별개로 2009 사법개혁이 폐지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선 절차적으로 공정/땀땀했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폐지절차는 시작도 안 되었지요.

▶ 저는 ○○○ 부장님 코트넷 글처럼 원로법관과 이원화 따로 돌리는 게 더 나올 거 같네요. 원로법관도 배당 줄여주는 것뿐이지 법원 옮기고 쉬운 사건 받으라 이런 아닌 듯요. 원장님들은 고등에서 원로법관



하심 되고 지방에는 원장님들보다 연세 많으신 지법부장님들 꽤 계세요.

▶ 그런데 이원화로 10조판사 된 분들 중 일부만 고등부장 승진하신 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저는 이원화 도입 공고문을 읽고도 "고법판사 되면 전부 고등부장 된다"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4기까지는 종전 방식대로 인사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구요. 작년 23기 서울고법판사 한 분이 소위 1차 고등부장 인사에 포함되지 않으셨는데, 그게 이원화 폐지나 정책변경으로 보이진 않네요

▣ 2016. 12. 법관인사규칙 부칙 개정 소문에 대한 반응

☑ 본글: 법관인사규칙 부칙의 개정

▶ 법관인사규칙 부칙 제2조(고등법원 판사 보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대법원장은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에 따라 보임된 판사로 고등법원을 연차적으로 충원한다.

제2항 고등법원이 제10조에 따라 보임된 판사로 전부 충원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라 고등법원판사의 일부를 보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10조판사를 계속 보임해서 고등부장을 없앤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부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앞으로 대법관회의를 통해 **위 부칙을 무효화 한다는 소문이 있네요. 이원화는 물 건너 간 게지요...**

▶ 2011년 사개특위에서 **법원조직법 제44조 제2항**(기간이 10년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현행과 같음) 중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 부분을 삭제하는 초안을 만들었으나 대법원이 "법관인사 이원화의 이행기 종료시점은 2017년 이후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여 보류됨

☑ 이에 대한 댓글

▶ 그전에 **왜 전체판사들의 의견수렴과정은 거치지 않는 거죠? 희한한 조직..**

▶ 제가 이해한 바와 같네요...이원화 도입 취지대로라면 10조판사 되신 분들 중 고등부장을 보임하면 안 되는 거죠...궁극적으로 전부 10조판사가 되는 것 아닌가요...이미 10조판사 중 고법부장 승진시켰을 때부터 이 제도는 폐기하겠다고 입장 밝힌거나 마찬가지

▶ 그런데 그때 이미 십조판사 지원하신 분들은 향후 자신들이 고등부장이든 원장이든 고위법관이 될 생각으로 지원했거든요. 그런 분위기였고요... 동상이몽이었던 것인가요....

▶ 법원조직법상 고등법원 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 방안에 의하더라도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일정 기수 이상의 고법판사에게 "고등법원 부장판사" 발령은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반대 의견인 분께서는 한 번 고법판사가 되면 일정 년차가 될 때 일률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발령을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인지요

▶ 이원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사개특위 초안에 맞추어 법원조직법 44조 2항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조직법 제27조와 제28조의3은 거기에 맞추어 개정하면 되구요.

▶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암튼기간에 공표까지 한 사법개혁을 별 논의없이 꿈수써서 폐기하려는 것 아닐까요?;;



▶ **공개 토론하면 판사들 동의를 못받으니 꼼수를 통한 전격 시행 밖에 정책 관철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행정처의 고충...**

▶ 전임 회장이 제도 만들 때부터 현 회장은 싫어했다는 후문이...

▶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문언상 "고법판사 제도"와 "고등부장 제도"는 양립 가능해 보이네요. 소문과 오해... 누가 하는 걸까요? "이원화"라는 세 글자에 대한 이해가 각자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개념과 다르다고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 위 규정을 고등부장 폐지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합니다. **10조판사는 태생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제도** 아니었나요? 전 10조판사가 모두 당연히 고등법원 부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환상이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등부장 승진 제도를 6-7년 앞당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되고, 앞 기수 먼저 자리 다 차지하고 난 후에는 자연 감소분만 채운다는 것도 불합리하고 그렇게 되면 **법원은 결국 죽은 조직**이 될 겁니다.

▶ 고등부장 승진제도가 가진 폐해가 가장 크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의 폐해가 더 큰지에 관하여 법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ㅎㅎㅎㅎㅎㅎ 아 이토록 내놓고 모욕을 하시니 유쾌하네요. 고등부장 승진제도가 없음 법원은 죽은 조직이 되고 지방부장들은 일도 안 하게 되다니, 미처 몰랐습니다 그려.

▶ 일본 제외 선진국들은 판사 인사이동 보직변경 거의 없지 않나요? 일본은 망했구요. (사법관료화 수준이 우리랑 비슷함)

▶ 지방.고등 이원화는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바꾸는 등 심급제도를 개편하고, 지방.고등법원의 조직과 인사를 구분하는 등 사법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개정을 필요로 하는 제도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인사 이원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는 위와 같은 제도 변경을 전제로 한 개념이고, 10조판사 제도 도입도 이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런 제도 변경 및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는 쏙 빠지고 10조판사, 고법부장 승진제도만 문제삼으니 지엽적인 비판에 그친다고 생각됩니다. **본질적인 논의는 고법부장 승진 제도 폐지가 아니라 심급제도 개편,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등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공론화 과정에서의 ‘법관 사회 반응’ 관련 착안사항

▣ 고법판사가 아닌 법관 사회 전체의 비판 대상

- 정책 변경 내지 보류 사실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의견 수렴 없는 정책 변경 사실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고법판사 아닌 법관의 경우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더욱 관심이 있음 ⇨ 사법행정의 정당성에 관한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젊은 법관의 경우 자신과 당장 관계가 없는 인사제도임에도 정책 변경의 절차에 관하여는 문제의식이 상당함



▣ 공론화 준비 과정에서 근본적 문제의식에 대한 답변 방향 미리 마련할 필요

● 고법부장 제도 폐지 여부

- 2011년 사개특위 논의 및 이원화 제도 도입의 전제가 되는 핵심 쟁점
- 고법부장 제도의 불가피성 또는 폐해 방지 방안 등의 쟁점을 정면으로 논의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사법부 내외의 문제제기에 대응할 기본 스탠스 마련하여야 함

● 합의부의 본질, 非對等 합의부 개선 방향

- 이원화 제도는 단순한 인사제도가 아닌 재판시스템 개선방안으로서 의의를 갖고 있음
⇒ 고법부장 제도와 관련성 없는 젊은 배석판사 등이 제도의 운명에 관심을 갖는 이유
- 최근 배석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젊은 법관들도 합의부의 본질 및 운영방향에 대한 고민을 매우 진지하고 깊이 있게 하고 있음

● 나아가 사법부의 나아갈 방향,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과도 연결되는 문제임

- 사건 처리 통계, 효율성 등의 제한된 기준만으로 이원화 제도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재판, 어떠한 재판부를 바람직한 형태로 제시할 것인지에 관한 사법 철학과 연관되는 지점임
- ⇒ 차기 대법원장님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슈로 사법부 내외부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큼

▣ 전환기에 이원화 이슈에 관심 및 논의가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부담이 매우 큼 ⇒ 다른 다양한 이슈 사전 발굴 및 제시 필요

● 차기 대법원장님의 사법철학이 이원화 이슈 하나만으로 평가받고 재단되는 것은 취임 초기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임기 내 다양한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될 위험성

- 이원화 제도(내지 고법부장 존치)라는 단일 주제가 법관 사회 논의를 과점하지 않도록 다양한 주제를 사전에 발굴해서 취임 무렵 사법부 내외에 화두로 제시할 필요 있음
- ex) 검찰 관련 형사재판 이슈, 헌법재판 이슈, 법조일원화와 우수인력 확보 방안, 사무분담 장기화 또는 자율권 인정, 일부 사법행정권의 각급 법원장 위임 등 ⇒ 추가 연구 필요

▣ 고법판사 여론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및 수렴 필요

- 2017년 말의 공론화 시작 전, 대선 직후 등의 적절한 시기에 고법판사 여론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 있음
- 행정처 간부의 인적 네트워크, 서울고법 자체 확인 등의 비공식 루트 활용



- 최근 고법부장 선발 강화, 고등배석판사 확대 등으로 인하여 고법판사들의 재판 진행 및 합의과정에서의 권한 내지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이른바 고법판사의 고법배석化 ⇨ 인사 불확실성 외에 재판업무 등 다른 영역에서까지 사기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 배려 필요

■ **법관 사회 다른 그룹에 대하여도 그룹별 여론 수렴 필요**

- 이원화 제도에 관하여는 경력별, 직위별 등으로 법관 사회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음 ⇨ 여론 확인 및 수렴 시에도 그룹별 수렴 필요
 - ‘법관 사회 전반’과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확인하거나 ‘고법판사’ 여론만을 확인하는 경우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제 법관 사회 진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위험성 높음
- 이원화 대폭 수정 내지 폐지 추진 시에는 각 그룹별로 각자의 기대이익 침해를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위무방안 내지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
 - 고법부장/지법부장/고법배석/단독/지법배석 등 그룹별로 이원화로 인한 기대이익 相異
 - 구체적인 위무 내지 제도개선 방안은 지속적 추가 연구 필요

■ **주요 변곡점·분기점에서의 대응 방향 및 수위 중요**

- ① 2017. 2. 정기인사 시 고법부장 인사 발표 결과에 대한 왜곡된 해석 우려
 - 이미 ‘24기까지는 종전 인사패턴에 따른 고법부장 보임 예정’으로 명확히 공지되었음에도 2016년 인사 시 23기 고법판사 중 일부만 고법부장이 된 것에 법관 사회의 동요 있었음
 - 기공지된 방안에 따른 인사 결과로서 이원화 제도의 향후 운영방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고지 내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② 2017. 3.경 국제인권법 커뮤니티의 소모임인 인사모가 법관인사제도 세미나를 외부 기관과 공동 개최하면서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주요 주제로 삼을 예정
 - 일부 언론 및 정치권이 가세할 경우 법관 사회의 동요 및 외부의 법관인사제도 개입으로 인한 타율적 결정 압박 우려
 - 현재 개헌 관련 대법원장의 인사권 비대화 방지 이슈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음 ⇨ 위와 같은 사법부 내외의 관심이 개헌 논의와 맞물릴 경우 사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짐
 - 외부의 관여를 차단하고 논의 주제를 변경 내지 완화하거나, 적어도 이원화 제도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전 정보 제공 및 논의 반영 필요함
- ③ 2017. 9. 초순경 차기 대법원장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의 운영방향에 대한 질의 가능성 높음

- 현재 관심을 보이는 이용주 의원 등은 물론, 더민주 의원 일부가 이슈화 및 이원화 관철을 시도할 가능성 있음 ⇨ 상반기 대선에서 야권 당선될 경우 더욱 강력한 압박 불가피
- 법관 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이라는 등의 답변을 통하여 사법부 내외부의 공격 내지 우려 수위를 완화시킬 필요 있음
- 그 이전 이○○·박○○ 대법관님 후임 대법관 청문회에서도 야당 측이 문제제기 할 수 있음
- ④ 2017. 11. 인사희망신청원 접수 기간에 이원화 제도에 관한 공지 여부 및 내용이 문제될 것임
- 구체적인 의견수렴 절차 또는 인사방향 등에 대한 공지를 바라는 법관 사회의 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정기 인사 관련 참고 사항

▶ **2018. 1. 1.자 정기인사 說**

- 법관 사회에 (사법연수원 출신 법무관 임관이 폐지되는) "2018년부터는 법관 인사를 2월에 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으므로 2018년 정기 인사가 1. 1.자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
- 이러한 예측에 의하면 인사희망원 접수도 현재보다 앞당겨 져야 함 ⇨ 이원화 제도의 방향에 관한 공지도 11월이 아니라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공지가 늦어질 경우 이원화 제도 폐지를 위한 시간끌기라는 등의 오해가 표출될 수도 있음**

▶ **조기 공지 필요성**

- 2017. 9. 차기 인사권자 취임 직후 근무평정을 제출받는 것이 부적절한 점, 신임법관연수기간 확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2018년 정기인사 시기를 현행으로 유지하는 경우 위와 같은 조기 공지 기대 여론을 감안하여 사전에 인사 시기 안내 필요할 수 있음**

☐ 사법부 외부 상대로 적절한 정보 제공 및 설득 필요함

- 외부의 문제제기가 기폭제가 됨
- 인사 문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법관들의 불만이 평소에는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다가 언론 또는 정치권의 문제제기나 비판을 계기로 강하게 표출되는 경우가 많음
- 인사 문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법관들이 내부 공지나 안내, 규정보다 외부의 문제제기나 비판을 쉽게 믿거나 수용하려는 경향도 있음
- 인사 제도라는 민감성만을 중시하여 언론 및 야당 의원들에게 정보 제공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최초 공지문의 내용 및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운영방향을 구체화



할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적극 설명할 필요성 있음

3. 「2017년 법관인사이원화 TF」 필수추진사항

■ ① 2017. 3. ⇨ 2017. 1. 31.자 고법부장 인사 발표 후 상황 점검

- 고법부장 인사 발표 결과에 대한 고법판사 그룹의 왜곡된 해석 우려
 - 24기 고법판사의 수는 10명(지방 포함)
 - '24기는 종전 인사패턴에 따른 고법부장 보임 예정'으로 공지되었음에도, 이번 인사에서 24기 고법판사 중 1명(강○○)만 고법부장 승진한 것에 대하여 고법판사들 동요
- 이에 따르는 법관 사회의 동요 우려
 - 2017. 1. 24.자 차○○ 판사의 게시 글 : 법원장이 아닌 판사회의 운영위원회가 사무분담 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 주요 형사부장의 고등부장 승진 관행 타파, 대법원장의 법원장 임명 권한 제한 등 논의의 공식화 제안
 - 2017. 2. 1.자 설○○ 부장판사의 게시 글 : 법관승진제도가 인사권자의 영향력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사법신뢰에 치명적이라는 점, 제도 개선을 위해 내부 논의가 필요하고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
 -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인사제도 관련 공동세미나 준비 등 기존 움직임과 결부되어 법관 사회 전반으로 동요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 ⇨ 법관들의 의견 수렴에 앞서 법관들에 대한 설명의 자리를 마련할 필요성
 - 이원화의 취지는, "1.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① 법조일원화에의 대비 ② 고법부장 승진제도의 문제점 개선, ③ 기존 인사제도의 안정적 운영의 곤란(서울고법 배석 적체) 해결, 2. 항소심 관련하여, 재판역량의 강화" 등이었음
 - 고법판사 그룹에 대하여, ① 위와 같이 이원화 제도의 취지가 고법부장 제도의 개선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② 24기 고법판사 중 1명의 고법부장 승진은 향후 고법판사 인사의 바로미터가 아니라는 점, ③ 고법판사 근무평정의 실태, ④ 특히 근무평정에 있어서 고법판사는 재판연구관, 심의관 출신 지법부장들과 차별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일반 법관들에 대하여, ① 이원화 제도 등 법관인사 문제에 관하여 내부의견 수렴절차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점, ②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 등의 내부적 요인, 정국 변화 등의 외부적 요인 등 법관인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 관하여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는 한편, ③ 법관인사와 관련하여 기존의 오해들(예컨대, 연구관 내지 심의관에 대한 평정상 우대, 원로법관들에 대하여 차량 제공이 계속되고 판결 작성을 하지 않는 재판관을 담당한다는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공식적 간담회가 아닌 비공식적 소규모 접촉이 필요

● 향후 법관인사제도의 재점검 역시 필요하다고 봄

- 이번 고법부장 승진 대상 24기 7명 중 6명의 특성 ⇨ ① 부장연구관 혹은 행정처 국장 출신, 특히 그 중 2명은 두 지위를 모두 경험함, ② 부장판사로서 지방 근무가 없거나 근무기간이 1년에 불과

- 법관들은, "① 연구관이나 심의관을 거치지 않으면 고법부장 승진이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연구관이나 심의관에 대하여는 근무평정상 우대를 하여 거의 "A"를 부여하므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다, ② 연구관이나 심의관을 거처도 고법부장 승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 자리를 가지 못한 법관들은 완전히 아웃사이드가 된다, ③ 연구관이나 심의관을 거친 법관들은 지방근무를 1년밖에 하지 않고 서울로 들어온다, ④ 연구관을 하다가 다시 심의관을 하는 등 소위 '회전문 인사'의 경향이 너무 뚜렷하다."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2014년부터 부장판사의 지방 근무기간이 2년이 되면서 이러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즉 지방 근무 1년만에 대법원이나 행정처로 발탁되는 인사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것인바, 곧 부장판사의 지방 근무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면 더 큰 불만이 제기될 것임

-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구관과 심의관은 한 부서만 거처도록 함으로써 인재 풀을 확대하여 구성의 다양화를 꾀하는 방안, 고등부장 보임에 있어서 근무평정 결과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고법판사 그룹에 대해 일정한 배려가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인사제도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 2017. 3. ~ 5. ⇨ 「2015년 TF」 연구 결과의 업데이트

● 통계 분석 업데이트 및 고도화

● 이원화 유지 방안, 수정 방안, 폐지 방안 등 각 세부 방안별로 내용 및 그에 따른 인사운용 로드맵 등을 지속적으로 다듬고 구체화

- 신임 대법원장님 최초 중요 보고사항 중 하나임

- ⇨ 신임 대법원장께서 TF 연구결과를 기초로 그 중 한 가지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연구된 각 방안별로 피해가 예상되는 그룹별 위무 방안 및 부작용 최소화 방안 구체화

■ [3] 2017. 3. ~ 7. ⇨ **법관 사회 전반의 움직임 파악**

- 고법판사는 물론 각 그룹별로 법관 사회 여론 및 반응 상시 점검
-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인사제도 비판 그룹과 관련하여 논의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4] 2017. 6. ~ 8. ⇨ **국회 및 언론에 대한 준비 확립**

- 인사청문회, 국회 질의 등에서의 이원화 관련 모범답변 초안 마련
- 필요할 경우 국회 및 언론 상대 설명자료 작성

■ [5] 2017. 7. ~ 9. ⇨ **이원화 제도 수정 공론화 대비**

- 방식, 대상, 의견수렴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검토는 물론 세부 공지문 작성에 대비한 초안 작성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
 - 일부 법관의 문제제기를 참조하여 이원화 제도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지법부장판사들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통한 재판 통제 및 관료화로 오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
 - 이원화 제도 재점검 및 재검토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이 지체되는 등의 여건 미성숙이 논의 배경이 된 것이라는 점 등을 적확하게 설명하는 방안 지속 연구

■ [6] 2017. 하반기 ⇨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지속적 연구**

- 이원화를 포함한 법관 인사제도 전반에 관하여 근본적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할 필요
- 고법부장 제도 폐지, 합의부의 본질 및 운용방향, 법조일원화 시대 합의부 운영 및 인사제도 관련 사법부가 추구할 가치 등 검토

[끝]



8. 29.(금)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

2014. 9. .

기획조정실

1. 상고법원 관련

가. 문제점

▣ BH 입장에서 전혀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언론스크랩 등을 통하여 약 1달간 신문기사, 칼럼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이 게재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BH 법무비서관실에서 보고서를 써야 될 정도로 이슈화되고 있지 않음
- 언론기사 중에서도 ‘현황 파악 필요 보도’로 채택된 경우, 그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나, 상고법원 이슈는 지금까지 한번도 ‘현황 파악 필요 보도’로 채택된 바 없음

▣ 상고법원 추진 논리가 국민들(BH) 마음에 와닿지 않음

- 언론 등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상고법원 관련 일관된 논리는 ①대법원 사건 수 많음, ②대법관이 힘들, ③상고법원 만들어야 함인데, 이는 이성적인 법조인들에게나 통할 수 있는 논리일 뿐임
- 일반 국민들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업무는 과한 것이 아니며, 특히,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임
 - 현재 대법관 업무가 많으면, 단순히 대법관 증원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음

나. 전략 수정 필요



▣ [현 상황 분석] 현재 이슈화 정도에 대한 비공개 대국민 설문조사 추진

- 상고법원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는지?
- 상고허가제, 대법관 증원, 상고법원 등 여러 상고심 개선 대안 중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은?
- 사건당사자라면, 대법원 또는 상고법원 중 어떠한 법원에서 재판받고 싶은지? 등등

▣ [대 국민]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의 논리 개발

-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접근(ex. 구체적 처리시간 단축, 대법관과 비슷한 경륜의 법관으로부터의 재판, 보다 자세한 판결문 등)

▣ [대 국회] 상고법원 지부 방안 검토

- 상고법원 관련 가장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각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사위 국회의원
 - 김도읍(부산), 김진태(춘천), 박민식(부산), 이병석(포항), 정갑윤(울산), 박지원(목포), 우윤근(광양), 임내현(광주) 등
- 서울에만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끝까지 고수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상고법원 지부' 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권리구제형 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만든다면, 굳이 서울 한곳에만 설치하는 방안을 고수할 필요 없음, 관련 판결 사이의 결론의 불일치 등에 대한 우려는 다른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음

2. '출향' 제도 관련

가. 문제점



-
- 법원과 검찰 사이의 공식적 인적 교류 점점 부족 ⇨ 상호 이해와 소통을 위해서는 인적 교류 활성화 필요

- 일본의 ‘출향’ 제도 벤치마킹

나. 검토 필요 사항

- ① 대법원 형사조 재판연구관실에 부장 또는 평검사급 검사 파견받음

- 수사 실무와 지나치게 유리되지 않은 합리적인 대법원 판결 가능
- 다만, 당사자적 지위에 있는 검사를 파견 받는 것에 대한 외부 비판 우려

- ②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부장 또는 평판사급 판사 파견함

- 국회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의보다는 조기에 법무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사법 법률전문가인 판사의 충분한 법적 지원 가능



미디어 오늘 기사 관련 언론 동향보고

2014. 9. 29.

홍보심의관

1. 미디어 오늘¹⁾ 기사 요지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무죄판결을 선고한 이○○ 재판장에 대하여, 김○○(이슈온에 이○○ 부장에 대해 탄핵소추 대표 청원을 한 사람)는 “이○○ 판사의 논리는 지속적으로 정치개입을 해오지 않다가 선거기간에 사이버 공작활동을 국정원이 시작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모순된 결과” 라는 것을 이유로 한 탄핵소추 의견을 이슈온(www.issueon.org)에 게재함
- 위 김○○의 탄핵소추 청원 의견은 정당함
- 김○○는 2014. 9. 11. ‘1심 판결 이후 이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김○○ 판사의 의견은 정당한 것인데, 이를 지적한 김○○ 판사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의견을 밝힘
- ‘김○○가 이슈온에 제기하는 문제는 정당한 것이며, 김○○의 이슈제기의 목적은 이○○ 판사의 1심 판결은 부당한 것이므로, 부당한 1심 판결을 한 이○○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는 것이 김○○의 입장인데, 김○○의 입장이 정당함
- 김○○는 ‘김○○ 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보면서 사법부나 재판부가 현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졌다’ 고 비판함

2. 일반 언론의 동향

1) 미디어오늘(Media Today)은 1989년 1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에서 창간하였다. 창간 당시의 제호는 언론노보였으나 1995년 5월 17일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2014년 5월 21일에 주간신문 950호를 발행했으며, 현재 대표이사는 신○○이다. 편집국 기자는 20여명 내외다. 현재 편집국장은 민○○이다. 미디어오늘은 좌파 미디어비평 전문매체다. 주로 보수 언론의 문제점을 비평하고 기성 언론이 다루지 않는 사회문제를 조명하며 한국사회 언론권력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 언론의 현재 반응 ⇨ 무관심

-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세계일보, 국민일보 7개사 법조출입기자들의 반응을 유선상 확인·점검하였으나, 한겨레, 경향신문도 위 기사에 대한 별다른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보도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3. 이슈온의 일반 국민의 지지 내지 참여 상황

▣ 김○○가 제기한 이○○ 부장판사에 대한 설문내용과 지지 현황은 아래와 같음

이슈온 홈 About 이슈온 성공하는 이슈온 이슈온FAQ 이슈온 SNS

법치주의는 죽었다!
사법 역사상 유례 없는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판결 재판장 이○○ 판사 탄핵소추 국민청원서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제1심 판결(2013고합577) 재판장 이○○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위한 '국민 청원 서명'을 시작합니다.

39% 달성 3,874 / 10,000명

발의 : 2014-09-24 마감 : 2014-12-31

f t 참여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관윤리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대국민 SNS대응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법원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공보관실에서 소속 대국민 SNS대응 콘텐츠를 홍보작가 의견을 참조하여 작성 중에 있음

▣ 법조출입기자단에 반박자료 제공 등의 대응 필요성 ⇨ X

- 현재, 법조출입기자들은 전반적으로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



-
- 따라서 현 상태에서 반박자료 배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 오히려 한겨레, 경향 등 진보 언론을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사를 제공하는 셈이 될 수 있음
 - 언론 동향과 추이를 관망하면서, 상황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임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2018. 7. 31.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 중재안에 대한 VIP의 거부권 행사 및 對 정치권 초강경 발언으로 정국 경색

☑ 6. 25. VIP 국무회의 발언 중 주요 부분

▶여야 정치권 비판 부분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꾸었는데 ...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여야가 합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버린 현실 정치가 난감할 따름 ...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 ...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

▶여당 원내대표 강력 비판 부분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한다'

▶정치권, 특히 여당 원내대표 관련 표현은 VIP가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짐

- 야당의 강력 반발 및 여당의 분열과 대혼란 ⇨ 6월 임시국회를 비롯한 정국 파행 불가피

- 상고법원 법률안 처리의 골든타임인 6월 임시국회 운영에 치명타

- 6월 임시국회 이후 정국을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사전에 모색할 필요

- 하반기 국회는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 선거구 확정 문제, 여야 총선 대비 정국 등으로 법안심사 여건 좋지 않음 ⇨ 19대 국회 임기만으로 의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전략 점검 필요

- 법사위원 중 찬성이 다수임에도 1소위에서 심사 정체 중임 ⇨ 1소위 통과를 위한 위원 설득 전략 중점 검토



2. 정국 분석 및 국회 일정 전망

■ ①VIP 거부권 행사 및 강경 발언의 파급효 분석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단순한 반감 표출이 아님 ⇨ 내년 총선 공천권을 비롯한 VIP 임기 하반기 국정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계산된 공세
- 유승민 대표 사퇴를 넘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 여당 지도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당 장악 시도할 것으로 보임

☑ '유대 다음은 무대 ... 김무성에 쏠리는 눈' (6. 26.자 경향)

'지금은 유 원내대표가 친박계 의원들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지만 다음 차례는 김 대표라는 이야기가 여권에서 공공연히 나온다. "유대 다음은 무대"가 정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 ⇨ ①대국민 직접 정치, ②공천권 행사, ③탈당 및 신당창당 등 다양한 메가톤급 정치 이벤트 예상됨
- ⇨ 정치 쟁점이 '이슈 블랙홀'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상고법원 법률안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

■ ②국회의장의 국회법 재의 상정 및 6월 국회 전망

- 국회의장, 국회법 재의를 위한 본회의 7. 6. 개회 방침 선언 ⇨ 국회 일시적 정상화, 1소위 7. 2. 개최

☑ '鄭의장, 與엔 '실리' 野엔 '명분'으로 중재 이끌어' (6. 30.자 세계일보)

▶ '정 의장의 중재는 야당에 '명분'을, 여당에는 '실리'를 챙겨준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 날짜를 확정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 정상화 명분을 얻고, 재의 뒤 민생법안 60여건을 처리하는 일정을 잡아 여당이 부담 없이 본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유승민 대표에게도 자진사퇴 여부 검토 시한을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됨

- ⇨ **7. 6.까지 주요 정치 쟁점 다수를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효과 있음** ∴ 법사위 통과를 위한 기회로서 의미 큼
 - ① 국회법 재의 관련 문제, 유 대표 퇴진 여부, 민생법안 방치 여부 등의 주요 이슈가 7. 6.까지는 숨고르기에 들어감 + 법무부 장관 청문회도 7. 6. ⇨ 일시적으로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 속 고요함 예상됨



- ② 대형 돌발변수가 많은 하반기 정치 지형상 하반기 국회에서 이와 같이 법안 심사에 방해 요소가 적은 시기가 확보된다는 보장 없음
- ③ 비록 심사순위가 후순위여서 어려움이 예상되나, 향후 정상적인 1소위 개최 자체가 극히 어렵다는 전제하에 한 번의 기회라도 적극 활용할 필요
- ④ 7. 6. 이전 7. 3. 법사위 전체회의 예정

▣ **37, 8월 임시국회 여부 ⇨ 필요성 vs. 돌발변수, 개최 가능성 ↑**

- **[+]** 메르스 사태 및 가뭄 극복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 ↑
- **[+]** 결산 처리 필요
- **[△]** 6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실적 현재까지 단 1건(메르스법) ⇨ 7. 6.자 본회의에서 ①(국회법 재의 관련 등으로 파행되어) 법률안 처리 실적 저조시에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론의 압박, 반면 ②법률안 정상처리시에는 임시국회 필요성 낮아짐
- **[-]** 유승민 대표 거취 문제, BH발 여당 개편 작업의 강도 등에 따른 정국 냉각 및 여야 극한 대치 가능성

☑ **6. 30.자 연합**

국회의 한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이번 회기 내 추경안 제출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해당되는 상임위만 해도 5, 6곳이 넘을 텐데 이를 위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추경을 하려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 역시 국회 정상화로 돌아선 만큼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관계자는 "맞춤형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며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이에 대해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심의하기 위해선 그에 앞서 작년 결산안에 대한 심사도 마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상임위별로 지난해 결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예결특위 및 본회의의 심사까지 6월 국회 회기 중에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 ⇨ 추경 등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가능성 높음
- 단 밀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로 열리는 것이 유리함
- 6월 임시국회에서 1소위 미통과시 7월 임시회에서 1소위 일정 확보 **긴요**



3. 1소위 반대 · 유보 위원별 설득 전략

▣ 총론

- ① 주요 언론 보도 및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대세론' 적극 부각
 - 법사위가 일반 여론과 달리 법무부 입장에 과도하게 경도되어 있음
- ② 의원별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수정안 내지 보완책 제시
- ③ 여야 중진들 적극 활용 ⇨ 여당 이병석, 김재경, 야당 박지원 등 (단 전해철 의원은 박지원 의원과 소원함)
- ④ 법사위원장 활용
 - 이상민 위원장, 상고법원안에 매우 호의적

☑ 법사위원장의 상고법원 관련 발언

'상고법원안 처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다. 제17대 국회에서 고법상고부 추진 당시 야당 간사로서 반대하였는데, 그 후 10년 가까이 상고심 개혁이 무산되고 있다' + α

- 본인 법사위원장 취임(제19대 하반기) 후 입법 실적 극히 저조 ⇨ 위원장의 자존심과 책임감을 자극하여 법률안 심사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

고유법안 처리현황	제18대 국회	제19대 상반기	제19대 하반기 (14. 5. 30. ~ 15. 6. 30.)
가결 (원안 및 수정 포함)	224건	52건	6건
(대안)폐기	179건	87건	6건
기타(부결 및 철회)	6건	12건	2건
총 처리건수	409건	151건	14건

- ⑤ 대법원 구성 다양화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과 분리 심사
 -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1소위 회부 상태 ⇨ **1소위 안건 상정 저지** 긴요
 - 상고법원 법률안과 함께 1소위 테이블에 올라갈 경우, 논의방향 예측 불가
 - [설득 포인트] ① [對여당] 진보 세력의 최고법원 진입이 매우 용이해질 것, ② [對야당] 검찰·행정 관료 출신 인사가 상당 비율 차지하게 될 것



■ 이한성 법사위 간사 겸 1소위 위원장

- , (중략) 것으로 알려짐

☑ 이한성 의원 자질론 제기되는 사례

(생략)

- 여당 간사 겸 1소위원장으로서 역할의 중요성 지대함 ⇨ **지속적·반복적으로 전방위 설득 및 압박 필요**
 - ①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서적 접근 강화**
 - ②법무부 반대 논리에 경도되어 적극 반대의사 표시하지 않도록 설득 ⇨ **‘조선도 아닌 중량급 재선의원으로서 법무부 견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기 보다는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는 명분 제공**
 - ③주요 언론의 우호적 기사 및 이해도 제고를 통하여 **중립 내지 조건부 지지 입장으로 전환 시도**
 - ④전임자 홍일표 의원을 통해, 후임 간사로서 사법부 최대 현안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지지 주문**
 - ⑤법사위 여당 의원을 대표하는 **간사이자 1소위원장에게 요구되는 추진력과 책임감, 주도적 심사권한 행사 필요성 자극** ⇨ 미개선시 향후 1소위 논의 과정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 기대 어려움
- **BH 및 법무부 입장을 배려한 수정안 제시, 설득** ⇨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에 BH 및 국회 지명(추천) 위원 다수 참여함으로써 최종 심 법원구성에 대한 **VIP의 관여 가능성 열어 두었다는 점 등**

■ 전해철 야당 간사

- [입장] ‘①대법원 구성 다양화와 ②사실심 충실화’가 우선되어야 함



을 명분으로 내세워 반대

● **[설득전략①]** 대법원 구성 다양화에 유리함을 부각

- 참여정부 당시 대법원 구성 다양화 상황 및 취지에 공감 드러낼 필요
- 권리구제형 상고법원 설치 시 정책법원인 대법원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대법원 구성 다양화가 필수적이고 불가피함** ⇨ 오히려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촉발하는 유리한 법안**임을 적극 내세울 필요 있음
- 대법관 후보자 추천 관련하여 **피천거인 명단 공개(비판언론인 경향신문도 7. 1. 지지 기사) 등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 개선에 관한 대법원의 노력** 설명
- **상고법원 판사 임명과 관련하여서도 대법원의 인사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국회 추천 위원 등의 외부인사가 과반수를 이루는 추천위원회 구성안 마련하였음을 부각**

● **[설득전략②]**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사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 설명

-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에 이은 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 각급 법원 법관 워크숍 등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논의·연구 중임 ⇨ **행정처가 아닌 각급 법원 단위에서의 자발적** 논의자료 및 결과를 취합하여 제시
-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과제가 아니므로, 상고법원 도입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상고법원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것**임을 설명

■ **김진태 의원(여)**

● **[입장]** 상고법원 관련 법무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 **상고법원 관련 최근 멘트 (6. 22. 매일경제)**

‘법원은 지금 하고 있는 재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할 때가 아니다 ... 하급심 충실화가 보다 시급하다’

☑ **김진태 의원 관련 중량급 국회의원의 조언 확인 결과**

‘김진태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통해 설득함이 효과적’ ⇨ 유승민 의원측 접촉결과 ‘김진태는 내가 아니라 친박 정권 실세 내지 법무부장의 영향권에 있다’는 답변

● **[설득전략]** 적극적·공격적 반대 입장을 **비판적 중립 내지 소극적 반대로 완화**할 필요

- ①**친박계 핵심 초선**이므로, **비박계 이병석 의원보다는 친박계 중진으로 상**



고법원에 찬성하는 정갑윤 의원 활용하여 반대 목소리 누그러뜨리는 방안

- ②민○○ 대법관, 정○○·이○○·김○○ 고등부장 등 가용한 인적 네트워크 총동원
- ③국민을 위해 상고제도 개선 시급한 상황에서 다른 현실적 대안 없음을 부각

■ 김도읍 의원(여)

- [입장] 대외적으로는 상고허가제를 대안으로 내세우며 반대 ⇨ 실제로는 지역구인 부산변호사회의 영향 등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보임

☑ 상고법원 관련 발언

▶ 4. 20. 법사위 공청회

‘한정된 법관 인력을 상고법원에 집중하면 1, 2심 재판이 부실해져 상고법원이 늘어날 우려 ... 대법원은 과감하게 상고허가제로 가야 한다’

▶ 6. 22. 매일경제

‘단독재판부를 줄이고 합의부를 늘려야 한다 ... 궁극적으로는 상고허가제까지 가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설득전략] 합리적이면서 지도부 지시에 잘 따르는 스타일이라는 평가
 - ①사실심 강화 노력 및 상고허가제의 난점 등 입체적·논리적 설명 필요
 - ②이병석, 정갑윤 등 여당 중진을 통한 설득
 - ③지방의 사법접근성 문제에 관하여 공감대 표시 필요

■ 노철래 의원(여)

- [입장]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실심 충실화 우선’을 명분으로 반대함

☑ 상고법원 관련 발언

▶ 1. 8. 한겨레

‘4심제로 늘어나 소송비용이 증가할 우려. 소송당사자들이 하급심에서 승복해 대법원까지 안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 6. 22. 매일경제

‘1·2심의 판결에 승복하는 분위기가 적은 것은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 ... 우선 하급심 판사들의 능력을 확대하는 게 급선무 ... 조정제도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설득전략]** 비법조인으로서 보좌진 의견 참조하는 것으로 알려짐
 - ①심리불속행 폐지를 전제로 하는 상고법원안이 국민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라는 점과 사실심 충실화 노력을 충분히 제공, 설득할 필요
 - ②주요 언론의 지지 기사 및 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명분으로 제시
 - ③친분 있는 홍일표 의원, 친박계 중진 정갑윤 의원 등을 통한 설득 필요

■ **서영교 의원(야)**

- **[입장]** 유보 입장에서 **'태완이 사건' 재항고 기각으로 악화 가능성**

상고법원 관련 발언

▶ 2. 25. 조선일보 전수조사 당시에는 찬성으로 분류

▶ 6. 22. 매일경제 ⇨ 유보로 분류

'대법원이 상고법원 인선을 담당하면 줄 세우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고법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태완이법 추진과 재항고 기각에 대한 강한 반발

▶ 대구항산테러 피해자측과 공동기자회견 열고 살인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하는 '태완이법' 발의 및 강력 추진

▶ 대법원의 6. 26.자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에 강한 반발

- **[설득전략]** 야당 의견 반영한 수정안도 논의가능함을 부각

- ①상고제도 개선의 **'시급성'** 과 국민의 불이익에 대한 공감대 형성
- ②서의원의 우려를 고려하여 상고법원안을 수정할 여지가 있음을 설득 ⇨
ex) 법관 **관료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 이춘석 의원의 지적에 따라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에 두기로 한 예** 등
- ③중진으로 친분 관계 있는 우윤근 의원 등 활용한 설득

■ **서기호 의원(야, 정의당)**

- **[입장]** 대법관 증원론 등을 내세우며 강력 반대 + 법원을 타깃으로 한 법률안 다수 발의

5. 22.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안번호 1915241) 개요

▶ 대법관을 18명으로 증원

▶ 대법관 중 1/3 이상, 판검사 제외한 직에서의 재직년수 10년 이상인 사람 임용



☑ 5 22.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1915238) 개요

- ▶ 대법원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하지 못하게 함
- ▶ 대법원 파기판결의 기속력을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으로 한정(사실에 관한 판단의 기속력 배제)

- **[설득전략]** 강온 양면전략 구사 ⇨ 동조세력 확산을 방지하여 고립시키는 전략
 - **[압박]** 서기호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연임하지않기로하는결정취소’ 청구(행정법원 2012구합287723)하여 1심 계속 중 ⇨ **7. 2. 변론종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 검토 필요**
 - **[유화]** 대법원 구성 다양화 방안에 공감 표시 +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 등과 같이 법원 구성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강화하고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하기 위한 자체적 노력 부각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정국 전망과 대응 전략

2015. 8. 24.

1. 사건 개요

가. 재판 진행 경과

■ 2010. 7. 21. 기소

- 공소사실 : 2007년경 3회에 걸쳐 약 9억 원(한화+미화) 정치자금 수수
- 1차 : 2007. 3.~4.경 한○○로부터 대선 경선비용 약 3억 원 수수
- 2차 : 2007. 5.경 한○○로부터 대선 경선비용 약 3억 원 수수
- 3차 : 2007. 9.경 한○○로부터 대선 경선비용 약 3억 원 수수

■ 2011. 10. 31. 서울중앙지법 1심 전부 무죄 선고(재판장 김○○ 부장판사)

- 약 1년 3개월 소요
- 전반적으로 한○○ 진술 신빙성 부정(한○○는 법정에서 부인)

■ 2013. 9. 16. 서울고등법원 2심 전부 유죄 선고(재판장 정○○ 부장판사)

- 징역 2년, 추징 8억 8천만 원(불구속)
- 1년 10개월 소요
- 한○○의 검찰진술 신빙성 인정

■ 2015. 8. 20. 대법원 상고기각 선고

- 5인 대법관 반대의견 있음
- 약 1년 11개월 소요
- 2, 3차 정치자금 6억여 원 부분 :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나뉨

나.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내용

▣ 다수의견 - 한○○ 검찰 진술 신빙성 인정

- 한○○의 제1심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상황 ☞ 한○○가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음
- 한○○가 허위 또는 과장·왜곡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 역시 특별히 나타나지 아니함
- 자금의 관리와 비자금의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의 일관된 진술 ☞ 채권회수목록과 장부의 기재 내용
- ① 1차로 조성된 자금에 포함된 1억 원짜리 수표 수수 + ② 1차, 2차, 3차 조성 자금 중 어느 쪽에 포함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2억 원 반환 ⇨ 나머지 6억 원의 자금도 피고인이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
- 한○○의 검찰 진술을 1차, 2차, 3차 정치자금별로 나누어 신빙성과 증명력을 달리 평가할 이유나 근거는 없음

▣ 반대의견 - 한○○ 검찰 진술의 신빙성 부정

- 동일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내용이 정반대일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공개된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쌍방의 신문을 거친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
- 2차 및 3차 정치자금 수수 부분에 관한 한○○의 검찰 진술 ☞ 신빙성 없고, 정○○의 진술 등만으로는 한○○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뒷받침 안 됨
- 한○○의 검찰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 있음
 - 한○○는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 받음, but 1회의 진술서와 5회의 진술조서 외에는 어떠한 조사를 받고 어떠한 진술

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음

- ① 한○○ 비자금 사용내역 못 밝히면 횡령죄 처벌 가능성 있음 + ② 수 사협조의 대가로 ○○○○의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 있었음

2. 대법원 판결 이후 정치권 반응 및 향후 전망

가. 새누리당

1)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

<새누리당 홈페이지 화면>



▣ 사필귀정, 낙장 판결은 유감

● 김영우 대변인 (8. 20. 현안 관련 브리핑)

-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 다만 판결 내용과는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유감이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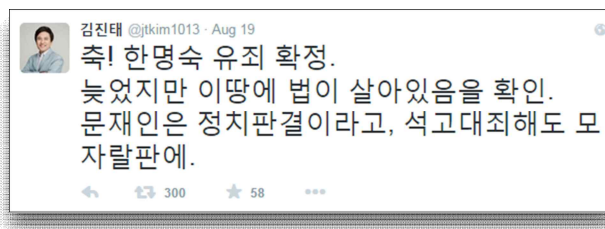
● 김용남 원내대변인 (8. 20. 현안 관련 브리핑)

- 한명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 이미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한○○ 전 ○○○○ 대표의 1억짜리 수표가 한명숙 의원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 부도난 후 한명숙 의원 측에서 2억 원을 반환한 정황도 밝혀졌다.
- 한명숙 의원과 문재인 대표에게 묻는다. 이러한 명백한 진실 앞에서도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대법원이 정치판결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 당 내부 분위기

-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식 언급 자제하고 있음
- 각종 회의에서 북한 군사 도발, 남북대화, 조선 3사 노조 파업 등만 언급
- 김진태 의원이 개인 트위터에 “이 땅에 법이 살아있음을 확인”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는 정도



■ 보수 언론의 지지

-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언론들도 새누리당과 같은 입장으로 대법원 판결을 지지

☑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언론 입장

- ▶ 조선(8. 21.), [사설] 한명숙 전 총리, 有罪 나오니 '정치 판결' 억지 쓰나
- ▶ 조선(8. 22.), [기자수첩] 野의 '비리 척결' 이중잣대 (김○○ 기자)
- ▶ 중앙(8. 22.), [사설] '한명숙 유죄'가 야당 탄압이라니 제정신인가
- ▶ 동아(8. 21.), [사설] 한명숙 전 총리 검은 돈 유죄...親盧 다시 폐족 되나

2) 향후 전망

- 일시적 호재이나 장기적 이슈는 아님

- 새누리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줄 정도의 장기적인 대형 이슈는 아니라는 판단

▣ 향후 총선 전략 마련에 촉각

- 오히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야당 내부의 증진 물갈이론이 탄력을 받을 경우 새누리당의 내년 총선 대응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위기
- 즉 국민들에게 상대당보다 더 개혁적인 공천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응 전략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보임

나. 새정치민주연합

1)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

▣ 당지도부 - 야당 탄압, 사법 민주화 운동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화면>



- 문재인 당대표 (8. 21. 제7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사법부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

겠다. 특히 **대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화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판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신호탄이다. **성완중 리스트**의 인물들은 검찰에서 면죄부를 받고,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했던 우리당의 **권은희 의원**은 정치 검찰에 의해 거꾸로 죄인취급을 받고 있다. 정의와 원칙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역지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당의 단합과 실천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8. 21. 제7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어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며, **긴급조치 시대로 돌아간 새로운 공안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됐다.
- 이 시간 이후에 우리당과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는 앞장서서 **박근혜 정권의 기획 사정 보복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자 한다. 오늘 그 뜻을 의원들께 묻고자 한다. 국민의 자유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여정에 선후배 동료 의원들이 동참이 있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 **유은혜 당 대변인 (8. 20. 오후 현안 브리핑)**

- 오늘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를 용납한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것이다.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원이 **‘무권유죄 유권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제 검찰이 작심하기만 하면 죄인으로 만들지 못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다.
- **정치검찰의 명백한 야당 탄압을 묵인**하고, 법의 저울추를 무너뜨려 사법정의를 훼손한 법원의 판결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

- 특히 **권력의 시너로 전략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당의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이연주 원내 대변인 (8. 20.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이제 대한민국에는 **정치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죄인'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오늘 그것을 용인했다.**

- 우리 당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어야 할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시너로 전략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 박수현 원내 대변인 (8. 23. 오후 서면브리핑)

-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정의와 사법부의 공정성 확보, 정치적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사법제도 개혁에 앞장 설 것**이다.

- 박범계 의원

- 대법원이 권력에 굴종해 자기모순적인 판결을 하였다. 검사보다 법관 앞에서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는 **공판중심주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 **당 내부의 복잡한 기류 - 계파별 온도차 ⇨ 親盧 v. 非盧**

- **당 지도부와 '친노' 그룹 의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사법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한 어조로 대법원을 비판

- 반면, **'비노' 그룹을 중심으로** "정치 판결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한 전 총리를 두둔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비노' 그룹은 대법관 전원이 한 전 총리가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일치해서 인정한 이상 무작정 한 전 총리를 감쌀 수만은 없다는 입장**

- **박지원 의원** : 우리 국민 정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순종하기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도 차분한 마음을 가질 필요 (8. 21. CBS 라디오 인터뷰)

- 새정치민주연합 이○○ 혁신위원 : 정권이 검찰을 통해 신공안정국을 조성한다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함

☑ 조선일보(8. 21.), 『野 이○○ 혁신위원, “대법원의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확정 판결 존중돼야 한다”』(최○○ 기자)

▶ 이 위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한 전 총리 판결에서 3억원 수수 부분과 동생 분이 1억원 수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리 반박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청와대와 정권의 의지에 따라 검찰 수사가 표적을 정해 이뤄질 수는 있지만 법원 판결까지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이 위원은 “우리가 집권을 한다고 해도 우리 의지대로 법원의 판결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봐야되지 않겠나. ‘정치탄압’으로 보기에겐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정권이 검찰을 통해 ‘신공안정국’을 조성한다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 8. 21. 긴급의원총회(제77차 의원총회)에서도 대법원의 한명숙 판결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들어 내는 데 실패 (TV 조선 8. 21.자 보도)

2) 향후 전망

▣ 당분간 親盧 지도부 중심으로 강력 대응 유지

- 한 전 총리는 참여정부의 상징적 인물이고 19대 국회의원 공천을 주도한 바 있어 ‘친노’ 성향의 현 지도부는 물론 한 전 총리와 친분 관계가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어조의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특히 대법관 청문회, 국회 본회의·상임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검찰과 대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장기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을 계속 비난할 명분 부족한 상황

- 대법관 전원이 한 전 총리가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일치해서 인정하였음
- ① 중도적인 한국일보와 ② 진보 언론인 한겨레신문도 사설에서 한 전

총리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조를 펴고 있음

☑ 한국일보 8. 21.자 사설, “5년 만에 끝난 한명숙 전 총리 재판”

▶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 등을 두루 살펴 대법관 전원이 내린 결론인 만큼 반박의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이나 한 전 총리 측이 대법원 판단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경우 역지를 부리는 것처럼 비치기 십상이다.

☑ 한겨레 신문 8. 21.자 사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확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 대 5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한 5명도 한 전 총리가 최소한 3억원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결국 한 전 총리가 받았다는 돈의 액수에 차이가 있을 뿐, 그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건 대법관 모두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

▶ 적어도 국무총리의 동생이 건설업자에게서 나온 1억원짜리 수표를 전세금으로 사용했던 점이나 그의 비서가 거액의 돈을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점 등은 누가 봐도 매우 부적절하고 의심스런 정황임이 분명하다. 이런 게 통용되는 정치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국회의원과 정치인, 고위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은 비로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여야는 이번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려 하기보다, 불신의 늪에 빠진 정치를 개혁하는 일대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치개혁에 과감하게 나서야 정당도 살고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언론은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 정도에 불과

⇒ 논거는 “공판중심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 경향신문 8. 21.자 사설, “부끄러운 한명숙 부패와 정치재판 의심스러운 대법원”

▶ 지난달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法諺)을 언급했다. 당시 13명 전원일치였던 만큼, 이번에 다수의견을 낸 8명도 이 말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명숙 사건에선 소수의견 쪽 대법관들이 이 법언을 거론했다. 양○○·민○○·고○○·김○○·김○○·조○○·권○○·박○○ 대법관은 한 달 사이 사법정의에 대한 신념이 바뀐 것인가.

☑ 오마이뉴스 8. 22.자 기사, “수사기록 아닌 재판기록 던져버린 대법원”

▶ 한○○ 대표는 첫 조사를 받은 2010년 3월 1일부터 1심 법정에서 출석한 2010년 12월 20일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70회 넘게 드나들었다. 하지만 검찰이 법정에서 제출한 기록은 그가 직접 쓴 진술서 한 부와 다섯 번의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서가 전부였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검찰 조서를 전부 믿기로 했다. 던져버려진 쪽은 수사기록이 아닌 재판기록이었다.

- 국민 여론은 야당에 불리 ⇨ 야당이 한 전 총리를 계속 두둔하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기는 어려움
 - [팩트의 호소력] ①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1억 원짜리 수표를 전세금으로 사용한 사실, ② 비서가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 ⇨ 법논리를 떠나 국민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가짐
 - [법원칙의 모호함] 경향신문 등이 지적하는 “공판중심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원칙이기에 국민들에 대한 호소력 떨어짐
 - [SNS 동향] Facebook 등 SNS 상에서도 진보 성향 법조인들 사이에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다수는 팩트의 호소력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비판 글이 계속 올라오던 원세훈 판결 때와는 다른 양상
- 정의당 등 진보정당, 참여연대 등 진보시민단체들도 대법원의 한명숙 판결에 대하여 일체의 논평을 하지 않고 있음
 -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진보진영과 갈등 중
 - 한명숙 사건은 제도권 기성 정치인의 부패와 관련된 사안 ⇨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의 한명숙 판결을 비난하더라도 법진보 세력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원세훈 판결과는 사안의 성질이 다름) ⇨ 親盧들만의 잔치로 끝날 위험이 매우 큼
- 향후 ‘여당무죄, 야당유죄’, ‘야당탄압’ 논조 유지
 - 향후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속 부각시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연계하여 ‘여당무죄, 야당유죄’, ‘야당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현 정

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정부·여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통한 공안 정국 형성’이라는 논조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임

■ 당내 역학 관계 변화

● ‘親文’ 중심으로 재편

- 이번 대법원 판결로 ‘親盧’의 한 중심축이던 한 전 총리가 정치권에서 사실상 퇴장함으로써 ‘친노’는 자연스럽게 ‘親文(문재인)’으로 재편성되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의 색깔이 한층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음

● 중진 물갈이론 탄력

-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문희상, 신계륜, 박지원, 김재윤, 신학용, 박기춘, 이종걸, 강기정, 문병호, 김현, 권은희, 김한길 의원)이 12명에 이르고, 대부분 3선 이상의 중진들이어서 그 중 일부는 자연스럽게 내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 높음

<경향신문 8. 21.자 기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검찰 수사·재판 현황

의원(선수)	혐의	현황
문희상(5선)	처남 취업 청탁	검찰 수사 중
김한길(4선)	성완중 금품 수수	검찰 수사 중
신계륜(4선)	입법로비 연루	25일 1심 선고
이종걸(4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재판 중
강기정(3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재판 중
김재윤(3선)	입법로비 연루	2심 징역 4년
박지원(3선)	저축은행 금품 수수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4년
신학용(3선)	입법로비 연루	25일 1심 선고
문병호(재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재판 중
권은희(초선)	국정원 댓글사건 위증	19일 검찰 불구속 기소
김현(초선)	대리기사 폭행 연루	재판 중
박기춘(3선·탈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구속 수감

- 이에 따라 당 내부적으로 내년 총선을 대비한 인적 쇄신을 통한 중진 물갈이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사법부 압박 카드로 ①상고법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②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야당이 사법부에 대하여 갖는 가장 큰 불만 ⇨ “현 정부의 검찰을 이용한 공안통치를 사법부가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하여 협조하고 있다는 점” (검찰의 독주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
⇨ 제1의 목표는 **검찰 개혁**이고, **법원 개혁은 후순위**
- 검찰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견제할 곳은 법원 밖에 없다는 인식 ⇨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향후 총선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법부 압박카드로 상고법원 등 대법원의 정책 현안 추진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임
- 특히 27일 개최될 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한명숙 판결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하여, “**대법관 구성 다양화**”, “**사법부의 보수화정치화(원세훈 판결 등)**” 등의 전통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노골화되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임

☑ **연합뉴스(8. 23.), “野, 대법원 숙원사업 상고법원 태클..대법관 청문도 유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여러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신공안정국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제도적 개선책으로서 법사위 현안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고법원에 대해 “**이번 판결이 나온 배경 중 하나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결여라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데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법사위원인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그렇지 않아도 상고법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향후 논의의 중차대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이제 상고법원은 논의할 가치가 없어졌다. 무시하는 전략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새정치연합은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다 최근 들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전제로 전향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으나 **한 전 총리 판결 이후 완강한 불가론 쪽으로 원위치하는 흐름**이다. 실제 **전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이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상고법원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친노(친노무현)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경론이 커지고 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중요한 의제인 만큼 의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치열한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이○○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중략)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 문제가 청문회에서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준 거부까지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박○○ 대법관님 청문회에서 보이콧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경험 존재
- 한명숙 판결을 청문회 보이콧의 논거로 삼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큼
 ⇨ 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을 확률 매우 큼
-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요구”를 청문회 보이콧의 논거로 삼기에는 역부족

☑ 김○○ 판사의 양○○ 기획조정실장(이종걸원내대표실)과의 면담 결과(8. 23.)

▶야당지도부(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회 등)는 대법원의 한명숙 판결 이후 대법원의 현안과 관련하여 꼬투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대법관 청문회 보이콧도 논의를 하고 있고, 월요일 저녁 짬 결론이 날 것이거나, 보이콧 가능성은 없어 보임 ⇨ 이춘석, 최원식 의원이 청문회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

▶상고법원 통과는 매우 어려워졌음 ⇨ 박범계 의원도 반대입장으로 돌아섰음

●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 ⇨ 새정치민주연합의 집중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래의 논점들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 있음
- 현 정부에서 노골화되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
- 대법관 구성 다양화, 사법부 판결의 보수화·정치화 경향(원세훈 판결 등)

<야당 인사청문위원 명단>

성명	학력	경력	상임위	비고
오제세	서울대 법대	국무총리실 공보비서실 국장	보건복지위	청문특위 위원장, 3선
전해철	고려대 법대	청와대 민정수석	법사위	청문특위 야당 간사
서영교	이화여대 정외과	청와대 춘추관장	법사위	초선
임내현	서울대 법대	법무연수원장	법사위	초선
이언주	서울대 불문과	변호사, 에쓰오일 상무	국토교통위	원내 대변인 초선
서기호	서울대 법대	판사	법사위	비교섭단체[정의당] 초선

3. 정치권 대응 논리

가. 새누리당 측

▣ 야당 봐주기에 따른 낙장 판결이라는 비판에 대한 대응

- 관련자 진술이 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공판·증거 기록이 70책을 상회하는 복잡한 사건임
- 대법원 소부에서 의견이 나뉘었고, 전원합의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세밀한 부분까지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합의를 마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음
-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으로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 사안이었음

▣ 향후 정치 쟁점으로 확대 가능성은 없어 보임

- 새정치민주연합의 ‘야당탄압’이라는 주장에 맞서 ‘오히려 야당 봐주기에 따른 낙장 판결’이라는 논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정치 쟁점으로 확대 가능성은 없어 보임

▣ 상고법원 관련 대응

- 대법원 판결이 늦어진 데에는 ‘상고사건 폭주에 따른 대법원의 사건 과

부하'라는 고질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아니함

- 대법원이 이번 사건과 같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들을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고심제도를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상고법원'이 될 수밖에 없음

나. 새정치민주연합 측

1) [총론] 대응의 기본 방향

■ 야당 내 분위기 냉철한 점검과 계파별 온도차를 이용한 Two Track 전략 필요

- ① 친노 세력(전해철, 박범계 의원) 등 한명숙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원 ⇨ 성급한 접촉시도는 역효과 ∴ 일정기간 냉각기 필요
- ② 법원에 우호적인 야당 내 영향력 있는 중진의원(이상민, 우윤근, 이춘석 의원)
 - ⇨ 적극 접촉을 통한 설득과 관계복원 노력 필요
- 이상민 법사위원장 ⇨ ① 법사위의 법률안 심사 실적 매우 저조하므로, 법률안 심사 드라이브 걸겠다는 법사위원장의 의지와 역량 적극 활용, ② 법사위원장의 관심 법안인 특허사건 관할 집중 법안에 대한 법원의 적극 찬성 및 지지 입장 어필하면서 상고법원 법률안과 패키지로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 개시해 줄 것 요청
- 우윤근, 이춘석 의원 ⇨ 이번에 상고법원 통과가 좌절되면 상고심 구조 개편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 강조하면서, 야당의 중진의원으로 법률안 심사 추진에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

☑ the 300, "내가 친노 비선실세? 전해철, 그를 위한 변명" (6. 16.)

▶ 우윤근 의원은 전해철 의원과 친분이 두터움

"3선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여년 전 변호사 시절부터 잘 아는 사이. 법사위 활동을 함께 하면서 실제 주요한 현안 등에 대해 많이 논의를 하고, 전 의원이 자주 조언을 구한다고"

■ **대법원 판결과 대법원이 추진하는 정책은 별개라는 입장 계속 유지**

- 대법원의 원세훈 판결, 한명숙 판결은 법과 원칙에 따른 독립적인 판결 결과이고, 상고법원 등 대법원이 추진하는 정책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 대법원의 한명숙 판결에 대한 야당의 비난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야당에 대한 입장을 저자세로 하기 보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원에 우호적인 야당 중진의원들 설득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적절

☑ **조선일보 8. 22.자 기사, "한명숙 판결, 정치적 영향·파장 고려 안해"**

▶ 박○○ 법원행정처장은 21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실형 2년을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치적 영향이나 파장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 박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일부 단체나 정당에서 한 전 의원 판결을 정치 탄압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며 의견을 묻자 **"법원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처장은 "한 전 총리의 기소 내용은 약 3억원씩 세 번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라면서 "1차로 받은 3억원에 관해선 대법관 13명이 전원 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2차·3차의 6억원 부분에 대해선 8대5로 유죄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 **검찰권 견제 필요성에 대하여는 사석에서 비공식적인 共感 표명**

- 새정치민주연합의 제1의 목표는 검찰권 견제 ⇨ 적절한 범위 내에서는 사석에서 비공식적으로 검찰권 견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표명 필요
- (예)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청구의 남용 등

2) [각론] 대응 논리

■ **공판중심주의 후퇴라는 비판에 대한 대응**

-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함

-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항소심법원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단이 항소심법원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것임
 - 항소심법원이나 대법원 다수의견은 기존 대법원 입장에 따라 판단한 것임 -> 공판중심주의의 후퇴라고 보기 어려움
- **상고법원을 위한 여당 눈치보기에 따른 전격적인 판결 선고라는 비판에 대한 대응**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달 3째 주 목요일에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선고기일 통지는 통상 2째 주 금요일이나 3째 주 월·화요일에 함
 - 이 사건의 경우도 8월 2째 주 금요일(2015. 8. 14.)이 임시공휴일이라서 3째 주 월요일(2015. 8. 17.)에 선고기일 통지를 하였고, 3째 주 목요일(2015. 8. 20.)에 판결이 선고되었음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합의를 마치는 등 신중한 검토를 거친 다음 판결을 선고하였음
 - 만일 대법원 판결 선고가 더 늦어져 내년 총선에 근접하여 이루어진다면 정치권으로부터 더 큰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임
 - 2013. 9. 30. 대법원에 사건 접수된 후, 약 1년 11개월 만에 선고 ⇨ 오히려 여당이나 보수 언론 등으로부터 선고가 늦어진다고 비판을 받아온 사건이라는 점 부각시켜 설명
 - 이 사건은 2014년 초부터 여당 등에서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요구했던 사건임 ⇨ 만약, 여당의 눈치를 살폈다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안에서 사건 접수 수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을 것임
 - 최근에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대법관 전원 평의를 거쳤고 이

를 통해 판결 선고가 성숙한 단계에 이름 ⇨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까지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해 온 사건 ⇨ 전격적인 선고기일 지정이라는 주장은 억측에 지나지 않다고 설득

■ 상고법원 관련 대응

- ‘여당유죄, 야당무죄’, ‘야당탄압’은 오해
-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사재판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법칙과 관련된 내용으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사안임을 강조
-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판결이라는 정치적 해석은 ‘가능하지도 가능할 수도 없음’을 강조

다. 상고법원 추진 동력 확보 방안

■ 상고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산 계기

- 여야 정치권, 보수·진보 언론 등에서 하나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극심한 입장차를 보임 ⇨ 대법원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사안
-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의 대법원은 상고사건 폭주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너무나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됨

■ 당 지도부 등이 주도하는 ‘통큰 결단’ 모양새 유도

- 법사위에서 상고법원 관련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는 현 상황에서는 결국 당 지도부 등의 ‘통큰 결단’을 이끌어내는 모양새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음
- 즉 상고심제도 개선은 향후 수십년 내지 수백년 동안 지속될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사법 개혁’으로 볼 수 있음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서는 항상 다양한 반대 의견이 존재하였다

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반대 의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고심제도 개선을 미룬다면 국회 본연의 임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임을 강조

- 여야 정치권이 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 스스로 비정상적인 상고심제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예컨대,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여야 정책위의장 또는 법사위 간사의 추상적인 내용의 합의문 발표 이후 법사위에서 세부 사항 논의)
- 당 지도부(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를 직접 설득하기 위한 전 단계로 상고법원에 우호적인 중진급 의원들(전현직 원내대표·상임위원장)을 상대로 당 지도부 및 법사위 위원들을 설득해 달라는 협조를 구함
- 상고심제도 개선이라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를 국회가 계속 방치한다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 이번 정기국회가 19대 국회에서 상고법원 관련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 강조
- 올해 상고심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면 최소 10년 이상 현행의 비정상적인 상고심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호소

4. 맺음말

- 한 전 총리가 참여정부의 상징적 인물이고 19대 국회의원 공천을 주도한 바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친노'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거센 비판이 당분간 계속될 것임
- 그러나 장기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속 부각시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연계하여 '여당무죄, 야당유죄', '야당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현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되고, 당 내부적으로는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하여 '중진 물갈이론'이 더욱 탄

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지지하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야당탄압'이라는 주장에 맞서 '오히려 야당 봐주기에 따른 낙장 판결'이라는 논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치 쟁점으로 확대시키지는 아닐 것으로 보임
- 법사위에서 상고법원 관련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는 현 상황에서는 결국 당 지도부 등의 '통큰 결단'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음
- 여야 정치권이 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주장에 찬성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여야 정치권이 '비정상적인 상고심제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끝>

인사정책 논의를 위한 판사회의 개최방안 검토

2018. 7. 31.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인사정책에 관하여 법관들과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 필요
 - 법관들의 관심이 가장 높고 민감한 인사 분야에 관하여 진정성 있는 소통 ⇨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불만 내지 냉소를 해소하는 첩경
- 쌍방향 소통 필요 ⇨ 판사회의를 활용한 의견 수렴 필요성
 - 일선 법관들이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의견이 전달되고 반영됨으로써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어야 함
⇨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일방형 소통이 아닌 쌍방향 소통 필요
 - 상향식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대표적인 제도로 판사회의가 있음
- 인사정책을 판사회의 안건으로 삼는 것의 적정성을 살핀 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 및 논의 범위 등을 검토함

2. 인사정책 논의를 위한 판사회의의 적정성 검토

- 인사정책 개선에 관한 의안 ⇨ 판사회의 심의 범위에 해당함

☑ 판사회의의 기본적 지위

- ▶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 (법원조직법 제9조의2)

☑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5조(직능)

① 판사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급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2. 대법원규칙의 제정이나 개정등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
3. 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



4. 사무분담이 확정된 후 특정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의 변경. 다만, 해당 판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6. 기타 각급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각급법원의 장이 회부한 사항
7. 제4조제3항(판사 1/5 이상 또는 내부판사회의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의 경우에 판사들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 하반기 임시 판사회의 개최에 따른 부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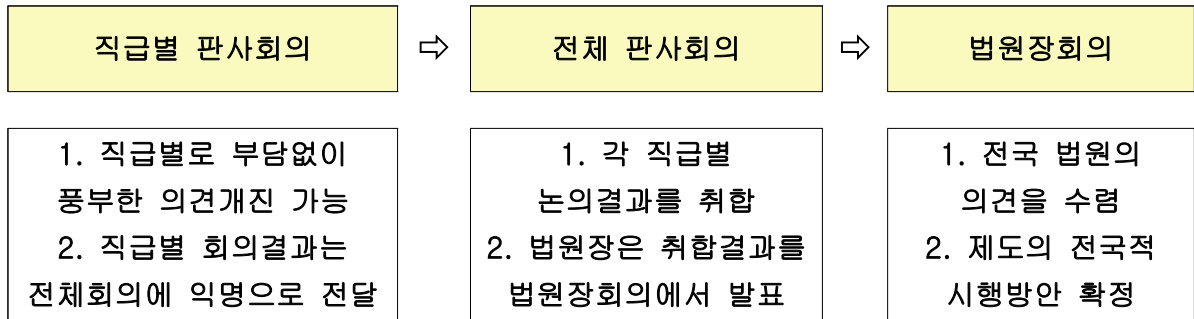
- ①민감한 주제인 인사제도 관련 논의가 부의되는 이상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사 관련 의안에 대하여 부적절한 의결이 이루어질 가능성**
 - ex) 고법판사 제도를 의안으로 삼아 고법 재판부를 모두 고법판사로 구성 하자는 의결, 기획법관공보관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결 등
- ②법원장이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도 **예상치 못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
 - 어느 회의든 선명하고 자극적인 강경과가 회의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음
- ③임시 판사회의 개최 선례가 **향후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판사회의의 빈번한 소집요구로 이어질 가능성**
 - 대부분의 법원에서 하반기 판사회의는 법관 송년모임에서 약식으로 진행 하거나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음 ⇨ 인사제도 논의를 위한 판사회의를 별도로 개최할 경우 판사회의의 빈번한 개최와 실질화를 촉발할 수 있음

■ 하반기 임시 판사회의 개최에 따른 순기능

- ①일선 법관들의 **판사회의에 대한 관심 및 실질화 욕구 높음**

☑ 故 이○○ 판사 사망(8. 7.) 직후 법관 익명 카페에서 판사회의 실질화 논의
▶ 직급별 판사회의 의장을 최선임이 맡는 관행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선출하고**, 판사회의 개최시 의장 등의 사건배당을 줄여주는 등 활성화 여건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사법행정 관련 의견을 모아 개선하자**는 취지

- ②직급별 판사회의로부터 법원장회의까지 이어지는 **상향식 소통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 ⇨ 일선 법관들의 높은 **절차적 만족감** 기대



- 위와 같은 상향식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거쳐 확정·시행되는 정책의 경우에는 시행 과정에서의 일부 불만 내지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음

● ③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 입장에서 좋은 설명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인사정책의 경우 공지글만으로는 일선 법관들의 동의를 얻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ex) 각종 휴직의 연이은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이 11월 내지 12월경 공지될 예정 ⇨ 그 무렵 열리는 판사회의는 공지글에 담기 어려운 인사운영상의 애로점 등을 일선 법관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임

● ④자문기구인 판사회의의 본질 및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인사제도의

특성 ⇨ 판사회의에서 인사제도에 관해 일부 돌출발언이나 의결이 나오더라도 사법행정에 결정적인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닐 수 있음

■ 검토 ⇨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하여 판사회의 개최

● 판사회의 개최의 필요성과 순기능이 더 큼

- ①상향식(Bottom-up) 쌍방향 소통을 상징하는 절차로서 판사회의 개최의 의의 큼 ⇨ 행정처가 독주한다는 오해 불식에 기여

- ②반면, 각 직급별·계층별은 물론, 동일 집단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인사 정책의 특성상 사법행정에 크게 부담되는 의결 결과가 속출할 가능성은 희박함 ⇨ 일부 법원에서 다소 부담스런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최종 논의의 장인 법원장 회의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지장 없음



3. 구체적 시행방안

▣ 고려사항① 판사회의 의안 범위 설정

- 12월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예정이라고 공지된 안전 ⇨ 적합
 - ①배석판사 근무기간 합리화 및 합의부장 순환근무 기준, ②유연근무제, ③ 임신법관 관련 배당기준
 - 위 안전들은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므로, 판사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이 자연스럽고, 안전 중 일부만을 판사회의에 회부하는 것은 부적절
 - 더구나 위 안전은 모두 법관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쟁점이어서 판사회의를 거칠 필요성이 크고, 사법행정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적음
- 고법판사 제도, 기획법관공보관 제도, 평정제도, 상고법원 도입, 법관 증원, 판사회의 권한 강화(의결기구화), 법전원 출신 법관에 대한 인사기준, 해외연수 개선방안 등 ⇨ 부적합
 - 현재 사법행정시스템 또는 사법행정권자에 대한 맹목적 비난으로 논의가 변질될 우려 있음
 - 사법부 주요 정책 추진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큼
 - 법관 증원의 경우 2014년 판사정원법 개정으로 5년간은 논의 무의미
 - 법전원 출신 법관에 대한 인사기준도 당사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논의함은 부적절 ⇨ 비공식 의견수렴이 바람직
- 전자소송 개선방안, 법관 업무량 경감 방안, 신입법관 임용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도 의견수렴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다만 위 ①~③안전 모두 법관의 근무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어서 그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판사회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
 - 나머지 위 안전들은 사전에 의안으로 삼지 아니하되, 회의진행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적절히 의견수렴하는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법관들에게 소통기회



부여하고 법원장 회의 또는 법원행정처에 논의결과 전달할 수 있음

● 종합검토

- 임시 판사회의가 인사제도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될 3가지 안건에 관하여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공간”임을 명시하여 소집할 필요 있음

■ 고려사항② 개최 및 공지 시기 검토

● 개최시기 관련 검토

- 전국법원장 회의 이전에 개최되어야 함은 물론임
- 전국법원장 회의 후 각급 법원 판사회의 개최는 의견수렴 절차로서 의미가 크게 반감되고, 법원장 회의 결정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수도 있음

● 사전 공지 시기 관련 검토

- 인사정책 관련 안건에 관하여 판사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큼 ⇨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질 경우 사법행정예 평소 불만이 큰 법관들이 조직적으로 판사회의 돌발안건 등을 준비할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의안에 관한 사전 제안 규정은 없으나, 제8조에서 ‘판사회의에 회부할 의안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의장이 판사회의에 임박하여 소집함으로써 제8조의 의안사전통지 규정을 활용하여 의안 추가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음

■ 고려사항③ 사전 공지 주체 및 유의점 ⇨ 각급 법원의 자율성 존중

● 사전 공지 주체

- 법원행정처가 코트넷 등을 통해 공지할 경우 상향식 의견수렴 절차로서 각 판사회의의 가치가 폄하될 가능성 ⇨ 법원행정처의 지시에 따른 요식 행위로 받아들여질 우려 있음



● 유의사항

- 회의의 공지, 소집 및 진행과 그 결과의 법원장 회의 반영 등 일련의 절차 전과정에서 각급 법원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모양새가 바람직함

▣ 고려사항④ 법원장회의 반영 및 결정사항 공지

- 법원장 회의가 단순히 각 법원장의 개인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급 법원 판사회의 결과를 기초로 논의를 전개하는 자리임을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 안내
- ⇨ 법원장 회의가 전국법관들의 관심을 최종적으로 집중시키는 이벤트적 기능·효과를 갖도록 함 ⇨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관심이 정점에 이르도록 유도함
- 법원장회의 논의 결과 공지 ⇨ 논의결과에 대하여 담당실국의 검토가 완료된 직후(늦어도 정기인사 이전) 전국 법관 상대 공지

▣ 회의 일정 예시 (전체 판사회의 대부분 월요일에 열림)

2015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5	16	17	18	19	20	21
			각급 법원 단위 전체 및 직급별 판사회의 공지 및 소집			
22	23	24	25	26	27	28
		각급 법원 직급별 판사회의				
29	30	12월 1일	2	3	4	
	각급 법원 판사회의				법원장회의	



법관인사 이원화제도 재검토 추진전략

2015. 10. 26.

기획조정실

1. 이원화 제도 재검토 필요성

▣ 제도 시행 후 5년 경과 ⇨ 부작용과 문제점 심화

- 2011년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시행후 5년이 경과되었으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
 - ①민·형사사건에서 일반재판부보다 **처리율·종국율·상고율·미제분포지수 등의 통계지수가 열세인** 추세 지속 ⇨ 15년차 이상의 우수법관을 집중 투입하고, 재판연구원 등의 지원도 집중되었음을 고려하면 **실패에 가까움**
 - ②이원화 제도 이행기의 **특정 기수(연수원 23기 이하)가 고법 재판부를 장기간 사실상 독점**하는 결과 ⇨ 고법판사들의 이익집단화 우려
 - ③우수 지법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원의 항소심 집중 현상 심화** ⇨ 사실심 충실화의 요체로서 사법부 핵심 정책인 **‘1심 집중’에逆行**
 - ④이행기 기수 이후 젊은 법관들의 **고등법원 근무 기회 사실상 차단** ⇨ 법관으로서의 성장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결과
- 반면, 당초의 **기대효과는 미미하거나 이원화와 직접 연관성 부족**
 - 이원화의 대표적인 효과로 거론된 법관의 중도 사직 및 관료화 방지, 법조 일원화에 따른 경력임용법관에 맞는 인사경로 확립 및 유인책 제시 등은 이원화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님

▣ 2016년 정기인사의 최대 현안 ⇨ 신속한 재검토 필요

- 고등법원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 법관인사 이원화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함**
- 2016년 정기인사의 최대 현안 ⇨ 순조로운 정기인사 일정을 위해 2015. 11. 20. 이전에 정책추진의 기본방향을 신속히 결정할 필요



2. [총론] 재검토의 기본 방향

가. 재검토 추진의 목표

▣ ① 폐지방안을 포함한 개선방안의 안정적 정착률

- 법관 조직, 특히 고법판사들의 혼란 및 재판역량의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함
- 명확한 인사기준 수립 및 공지, 제도변경에 따른 빈틈없는 인사실무처리가 뒷받침 되어야 함

▣ ② 인사제도의 일관성·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 저하 최소화 방안 및 정책변경에 따른 반발에 대한 대응방안 사전 수립 필요

● [人的 범위] 사법부 내외부의 강한 반발 예상됨

- 이원화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법관]은 ①소수일뿐만 아니라 ②찬성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승진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감) 상황인 반면,
- [폐지에 반대하는 법관]은 ①다수일뿐만 아니라, ②조직적 반대가 예상되는 고법판사 그룹은 물론 ③평소 사법행정에 불만이 있던 법관들까지 적극 가세할 가능성 있음
- [정치권 및 언론]에서도 그간 이원화제도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옴(이는 법원이 이원화 도입 당시 ‘법관의 중도사직 방지, 하급심 충실화, 법관관료화 해소 등’을 장점으로 대거 홍보 및 설명한 영향도 상당함) ⇨ 이원화 폐지 시 사법부 공격의 빌미가 될 것임

● [物的 범위] 이슈의 측면에서 이원화 폐지 여부에 한정되지 않고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만 표출로 확산될 위험성 큼

- 인사제도의 민감한 특성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반박 내지 문제제기’를 넘어서는 강렬한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고, 이원화제도 뿐만 아니라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평소의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 높음
- 나아가 사법행정 전반 및 사법행정권자에 대한 불신, 반발 및 공격으로 확산될 수 있음



나. 재검토의 범위

▣ 이원화 정책의 전면적 포기 vs 존속을 전제로 보완책 마련

수정 1안 (구제도)	수정 2안	주요쟁점	수정 3안	수정 4안	수정 5안
폐지	폐지	고법판사	유지	유지	이원화 유지
유지	유지	고법부장	유지	유지	유지
승진제	승진제	보임방식	승진제	고법판사中 승진제	고법판사中 negative제
고법부장 독점	1심: 1심법관 2심: 2심법관	주요보직	1심: 1심법관 2심: 2심법관	1심: 1심법관 2심: 2심법관	1심: 1심법관 2심: 2심법관
모든 고법부장	1·2심 배분	차관처우	1·2심 배분	1·2심 배분	1·2심 배분

※ 노란색 음영: 법관인사 이원화 이전 종전 제도(수정 1안)와 변경이 생기는 부분

- 이원화 제도 존속을 전제로 한 수정 3,4,5안 ⇨ **문제해결 기능 미흡**
 - 고법부장 탈락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 ① **최초 제기된 문제점**인 i)처리율·종국율·상고율 등의 통계와 재판의 질 저하 우려 ii)특정 기수만 고등법원 재판을 경험하고 독점하게 되는 문제 등에 대하여는 뚜렷한 **개선책이 되기 어려움**
 - ②우리의 심급제도하에서 고등법원 재판부 3인 전원을 선발된 우수자원으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도 **효율적 인력배분의 측면에서 의문** 있음
 - ③고법부장 탈락 지법부장의 **사직률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원화 제도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에 한계** 있음

※ **고법부장 탈락 기수인 법조경력 22년 이상 지법부장의 사직률**

▶ 2008년 34.4% ⇨ 2015년 10.8%로 급감

- 이원화 폐지에 따른 고법부장 승진제 전면 시행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가능
 - 오히려 ‘누구도 탈락시키지 않는 조직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존속할 수 있겠느냐’ 는 외부의 지적도 경청할 필요 있음 ⇨ **승진·선발제의 장점 및 불가피성에 대한 재인식 필요**함



- 법조일원화에 따른 경력법관 대거 유입으로 인해 종래 강점이 있던 ‘사건 처리의 신속·효율성’을 상당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효율을 증시하는 고법부장 선발제 및 부장-배석의 효율적 재판부 운영시스템 필요함

▣ **검토의견** ⇨ 내부적으로는 [전면 폐지], 외부적 공표는 [존속을 전제로 보완책 검토]

- 내부적으로는 이원화 제도 전면 폐지를 전제로 한 재검토 방식 및 방향을 설정할 필요 있음
- 일선 법관들 상대로 [보완 검토 중]이라고만 공표하더라도, 이원화 제도에 대한 고법판사 및 일선 법관들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약화되고, 이원화 제도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여지가 큼 ⇨ 이원화 제도가 스스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어 소멸하도록 유도
- 2017년 차기 대법원장님 취임까지 정기인사 2차례만 남아 있음 ⇨ 일괄 폐지부터 단계적 개선까지 재검토의 추진방식을 검토하고, 구체적 방안별로 공표 및 시행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략적 검토 필요

다. 재검토 추진의 방식

▣ **단계적 순차 시행 vs 전면적 일괄 시행** ⇨ **단계적 순차 시행**

- **전면적 일괄 시행 방안**
 - [장점] 이원화 제도 시행기간이 길어질수록 바로잡기 어려워지므로 조기에 문제점 해소, 일선 법관들의 혼란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음
 - [단점] 사법부 내외부의 강한 비판 ⇨ 특히 ① ‘신뢰이익 침해’를 명분으로 한 고법판사의 조직적 저항, ② 미래 사법부 청사진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이 5년만에 변경됨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에 대한 신뢰 붕괴’ 및 ‘법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인사제도 변경에 관한 의견수렴절차 결여’를 명분으로 한 일부 소장법관 집단의 강한 반발 우려됨

☑ 다수 법관이 심정적으로 동조할 가능성

▶ 2010년 이원화 제도 도입 당시 설문에 응한 법관의 90.9%가 이원화 제도에 찬성함



- [검토] 법관 조직이 크게 동요될 우려가 있고, 향후 주요 사법정책에 대한 일선 법관의 신뢰도에 큰 타격(인사권자가 바뀌면 인사의 근간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우려)이 불가피함 ⇨ 적어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내부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친 후 개선책을 시행할 필요 ⇨ 단계적 시행 방안

- 단계적 순차 시행 방안

- 전면적 일괄시행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 [성공적 시행을 위한 필수 요소] ①이원화 제도의 문제점 및 재검토의 불가피성에 대한 지속적 안내와 문제제기, ②법원행정처의 확고한 인사제도 개편의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 형성 및 확산, ③폭넓고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긍정적 내부공감대 형성 ⇨ 개편에 따른 반발 최소화 및 개편동력 확보를 통해 조직 동요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안정적 조직 운영도모

- 단계적 순차 시행방안으로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을 위한 2016년 정기인사 관련 공지 전략을 구체적 항목별로 검토할 필요

3. [각론] 이원화 제도 개편 방안의 구체적 내용

1) 구체적 추진항목 개관, 필요성 및 시행전략

- [검토 순서] 법관 상대 공지·공표로 인하여 법관사회에 미칠 충격이 약한 것부터 강한 것의 순서
- ①고법판사의 경향 교류 ⇨ 2015년 공지

☑ 시행 필요성

- ▶ 이원화 도입 당시 코트넷에 '전국 단위 전보인사 예정'임을 두 차례 공지
- ▶ 2015. 9. 2차 처장님 명의 공지글도 '2016년 정기인사부터 지방권전보 시행방안 검토 중'임을 명시

☑ 시행 방안

- ▶ [2016년 정기인사 공지 필요] ①2016년 전보대상(고법판사 5년이상 근무, 지방근무경험 없이 부장 1년차에 보임된 고법판사), ②전보기간(동기 지법부장의 지방근무기간과 형평 고려하여 1~2년) 등

☑ 법관 사회에 미칠 영향 및 공지 관련 시행전략

- ▶ 최초 도입시 예정된 것으로 큰 반발 없을 것이나, 형평에 맞는 인사 실무기준 정립 필요함
- ▶ ⇨ 구체적 기준까지 검토하여 명확히 공지함이 바람직



■ 2고법판사의 특수보직 보임 ⇨ 2015년 공지

☑ 시행 필요성

- ▶ 책임자 보임 원칙 관철 및 인사권자를 위한 적정후보군 확대 필요
- ▶ 9. 2차 처장님 명의 공지글에서 '고법 재판역량 강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재판업무만 담당 하도록 할 것인지, 인력의 적절한 배분과 역할 담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라도 문을 열어 두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

☑ 시행 방안

- ▶ [2016년 정기인사 공지 필요] 장기적인 보임 규모 등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2015년에도 이미 특수보직 보임이 이루어졌으므로, 2016년 보임 여부만 간략히 공지하면 됨

☑ 법관 사회에 미칠 영향 및 공지 관련 시행전략

- ▶ 1~3명에 불과하고, 이미 시행 중이어서 별다른 반발 없을 것임

■ 3고법판사의 지방법원 복귀 ⇨ 2015년 공지

☑ 시행 필요성

- ▶ 이원화 도입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 내에 지방판사로 전보될 수 없다'고 공지 + 법관 인사규칙 제11조도 같은 취지
- ▶ '특별한 사정'에 법관 본인의 희망은 당연히 포함 ⇨ 특히, 고법판사 지원 당시 이원화의 완성된 형태를 안내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상당기간 근무 후 본인의 전보 의사 존중할 필요도 있음
- ▶ 9. 2차 처장님 명의 공지글에는 별도 언급 없으나, 2015. 8. 하계인사발령시 1명의 고법판사가 지방으로 전보됨

☑ 시행 방안

- ▶ [2016년 정기인사 공지필요] ①신청에 따른 지방법원 복귀 허용 기준(원칙적으로 고법판사로 5년 이상 근무 요건,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은 경우의 방안 등), ②복귀 후 지방에서의 보직(고법판사 재직기간의 단독부장 근무기간 포함 여부 등) ⇨ 요건 완화하여 지방 복귀 촉진 + 고법배석 자리 최대한 확보할 필요

☑ 법관 사회에 미칠 영향 및 공지 관련 시행전략

- ▶ 희망자에 한하는 것이고, 2015년 예외적으로 1명의 사례 있었으므로, 별다른 반발 없을 것임. 단 지방근무 신청자가 예상 외로 다수인 경우를 대비한 대응방향 사전 검토 필요
- ▶ 복귀 후 지방에서의 보직 등은 일괄 공지하기 보다는 지원 희망자들 상대로 안내하는 형태가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불필요한 논란 차단 필요)



▣ 4 고법판사의 보임규모 축소 ⇨ 2015년 공지

☑ 시행 필요성

▶ 이원화 제도 폐지 또는 전면수정을 대비하여 최종 정책결정시까지 연착륙을 위해 대등부 축소하고 일반부 확대할 필요 있음. 대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논거 제시 가능

- ① 고법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검토 필요 ⇨ 판결문 작성 및 재판부 생활 등에서 피로가 누적된 고법판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의 제도개선 검토임을 명시

- ② 사실심 충실화, 특히 "1심 집중"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 ⇨ 재판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해야 할 우수한 부장판사 다수가 항소심에서 판결문 작성에 주력하는 것에 비판적 견해 다수 존재, 평생 법관제 정착 등 변화하는 법조환경이 정착될 때까지는 제한된 부장판사 자원이 항소심에 편중되는 현상 방지할 필요 있음

- ③ 일부 기수가 고법 재판부에 장기간 근무함에 따라 이후 기수의 고법 재판 경험 기회가 차단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 i) 고법 재판부 근무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도 근무 기회 부여 반드시 필요하고, ii) 고법 구성을 경력별로 다양화하는 것이 재판에 다양한 가치를 담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④ 상고법원 도입 여부에 따른 심급구조 개편결과를 반영할 필요 ⇨ 상고법원 도입시 상당한 인사 이동 등을 고려할 때 대등부 확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 가능

- ⑤ 대등재판부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장단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당분간 민·형·가사 행정재판부별은 물론, 의료·지재 등 각 전담분야별로도 일반재판부와와의 대비가 필요함(대조군 필요)

⇨ 이상적 심급제도를 위한 바람직한 재판부 구성 및 운영방안 검토를 위해서도 대조군 필요함

- ⑥ 복귀 법원장의 급증 및 사직률 감소로 인한 고법 재판장 인력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고법의 모든 재판부를 (재판장이 주심판사 역할도 담당하는) 대등재판부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

- ⑦ 특히 지방권의 경우 고법 배석판사 근무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함으로써 복잡하고 소가가 큰 사건을 처리할 기회를 제공하고, 법관 조직 전반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 있음

▶ 9. 2.자 처장님 명의 공지글에서도 '서울고법 재판부가 고법판사로 전환되는 시기가 고법판사의 보임 규모, 재판부 증부 등과 관련하여 2020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즉, 일정 비율의 재판부는 종전 방식의 고등배석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검토 중'이라고 안내

☑ 시행 방안

▶ [2016년 정기인사 공지필요] 위와 같은 필요성 및 변경된 보임 규모 공지

☑ 법관 사회 미칠 영향 및 공지 관련 시행전략

▶ 이원화 제도 폐지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나, 행정처의 정책검토 방향을 일선 법관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감수해야 하는 부분임 + 서울고법에서 이미 관련 TF 운영 중이므로 거부감 완화 가능

▶ 고법판사 지원 쿼터가 축소되는 결과가 되는 28기~30기 법관의 반발 여부 ⇨ 미미할 것임

▶ 고등배석 근무 인원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는 33~34기 법관의 반발 여부 ⇨ 소규모 인원의 증가에 불과하여 고등배석 근무 희망자로 충분히 충원가능함

▶ ⇨ 고법판사들이 심정적으로도 수긍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대등재판부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2016년 이후에도 지속되는 분위기 조성할 수 있는 공지글 준비 필요



▣ **5 고법부장 선발제도 존치 ⇨ 명시하지 아니하되, 존치하는 취지가 담기도록 하는 전술적 모호함 요구됨**

☑ 시행 필요성

▶ 이원화 도입 공지에 의할 때 고법부장 보임은 25기가 승진대상이 되는 2018년 무렵 소멸됨
 ▶ 9. 2차 처장님 명의 공지글 '고법부장 직위 존치 여부 관련, 고등법원 재판의 효과적인 진행, 현행 법원조직법상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하도록 규정된 측면 등을 고려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만약 고법부장 직위 유지할 경우, 종래 방식에 따른 고법부장 보임이 예정되어 있는 23, 24기 외에 고법판사 인원이 크게 늘어난 25기 이하에 대하여도 인사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등법원 재판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

▶ 앞에서 살핀 여러 사유로 고법부장 선발·승진제도 유지함이 타당함 ⇨ 특히 **이원화 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고법부장 선발제도와 양립가능함** (수정 3,4,5안 모두 동일)

- 고법판사 중 일정한 선발을 거쳐 일부에게만 고법 재판장의 직위를 부여할 실질적 필요도 있음

☑ 2016년 정기인사 공지 여부 ⇨ 전술적 모호함 요구됨

▶ 이미 처장님 공지글을 통해 **고법부장 존치 가능성 언급됨**. 나아가 '**만약 고법부장 직위를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함으로써 **고법부장 존치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고법부장 존치에 관하여, 적어도 위 공지글과 유사한 수준의 입장 표명이 지속되어야 함

- 입장 표명이 중단되거나 모호해질 경우 부정확한 루머나 왜곡된 정보가 확산 및 유포될 위험성 있음 ⇨ 안정된 법원 조직의 운영에 큰 부담이 됨

▶ 단 고법부장 승진제도가 (이원화 도입 전과 같이) 전면 시행됨을 명시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 있음

- ① **고법판사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과거의 선발·승진제도에 뿌리깊은 정서적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우려** 있음 (이원화 제도 찬성을 90.9%의 근거에는 고법부장 승진제에 대한 반감이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 ② 법관 관료화를 비판하고 있는 일부 **정치권, 법조단체 및 시민단체도 위와 같은 법관들의 반발에 적극 가세할 것이 명백함**

- ③ **상고법원 등 주요 사법현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성이 강하고 민감한 주제'에 관하여 '불필요하게 전선을 확대'할 이유가 없음** ⇨ 고법부장 존치 공지가 1~2년 앞당겨진다고 하여 사법행정상 큰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님

- ④ **최종 정책결정이 예상되는 2017년 하반기까지 2차례의 정기인사 과정에서만 모호함을 유지하면 됨** ⇨ 사법행정상 큰 부담이 되지 아니함

▶ 결국, 고법부장 존치 여부를 명시하지는 아니하되, 존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 검토 중이며, 나아가 법원행정처가 존치의 장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취지로 공지함이 바람직함



■ [6] 고법판사와 지법부장간 교류 ⇨ 2015년 공지 제외

☑ 시행 필요성 여부

- ▶ 최초 공지나 금년 처장님 공지에는 언급 없음
- ▶ [장점] ① 고법판사에게 재판장 근무 기회 부여함으로써 고법판사 역량 강화, ② 지방법원 복귀 여부 결정을 위한 적성 타진, ③ 고법판사 장기간 근무과정에서 환경변화 기회 제공 등

☑ 2016년 정기인사 공지 여부 ⇨ 소극

▶ 아래와 같은 단점 및 시기적 문제를 고려하여 시행 여부 정책 결정 필요

- 허용 요건 및 지법에서의 보직, 보임기간 등 세부 요건에 관하여 추가 검토 필요
- 지법 합의(항소)부장 보임은 부적절하고, 단독부장의 경우에도 단독재판장 보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단독/배석판사 직급에서 상당한 반발 예상**
- 2016년에 경향교류, 지법 복귀 등 다양한 인사교류가 최초 시행되는 상황에서 지법과의 교류까지 확대할 경우 **인사상 혼란 및 불안정 위험성**
- 2017년 이후로 시행시기를 미뤄야 하는바, 2017년 하반기 **이원화 폐지 가능성에 비추어 굳이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함**

- ▶ ⇨ 이원화 폐지 연기 또는 취소되는 경우 단독/배석판사 직급의 여론동향까지 고려하여 소규모로 실시, 공지함이 타당함

■ [7] 지법 주요보직 설정 및 차관급 예우 배분 ⇨ 2015년 공지 제외

☑ 시행 필요성 여부

- ▶ 최초 공지나 금년 처장님 공지에는 언급 없음
- ▶ [장점] ① 고법부장 선발제도 유지시 비선발 법관에 대하여도 직무 관련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써 업무 효율 도모하고 조직에 긴장감 부여하는 관리방안 필요 ② '고법부장이라는 단일한 승진체계'로 인한 부작용 완화 ③ 평생법관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법원 장기근무 토대 마련

▶ [한계]

- ① 신속한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 ⇨ 이원화 제도 폐지 및 고법부장 선발제도 전면 시행을 전제로 할 경우, 사직률 급감 등 변화된 여건에 비추어 고법부장 제도 시행의 장단점을 검토 후 보완책을 마련하여도 늦지 않음
- ② 비선발 법관에 대한 誘因 제시 및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지법에 주요보직을 설정하여 차관급 예우를 배분할 당위성은 없음 ⇨ 지방법원 장기근무를 촉진할 다른 근무의욕 고취방안 상세 검토 필요
- ③ 고법부장 승진제로 인한 단점 해소 방안은 고법부장 지원제 등 다른 방안과의 종합적인 구도하에서 검토되어야 함

☑ 2016년 정기인사 공지 여부 ⇨ 소극

- ▶ 설령 시행하는 것으로 정책결정되는 경우에도 '이원화 제도 폐지 및 고법부장 선발제도 전면 유지'를 명시적으로 공표하는 시기에 맞춰 그 보완책으로 제시하면 충분함



2) 이원화 제도 폐지 공표를 위한 로드맵 검토

▣ 궁극적으로 이원화 제도 폐지함을 전제로 그 공표를 위한 기본전략 및 로드맵 검토 필요

- 2015. 11.경 내년 정기인사를 위한 인사 관련 공지 [차장님 명의]
 - [공지대상] 고법판사의 ①경향 교류, ②특수보직 보임, ③지방법원 복귀, ④보임규모 축소에 관하여는 명시적 공지
 - [가능성 언급] 고법부장 선발제도 존치 여부에 관하여는 존치의 가능성이 언급되는 수준의 공지
 - [공지 제외] 고법판사와 지법부장간 교류 및 지방법원에 차관급 주요 보직 설정 등에 관하여는 공지하지 아니함
- 2016년 ⇨ 이원화 제도에 따른 대등재판부 등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공지 지속
 - 통계상의 약점은 물론, 다른 기수와와의 형평, 법원 내외부의 비판적 시각 등이 법관 사회에 자주 회자되고 홍보되도록 할 필요

☑ 최근 법관 익명카페에서의 흥미로운 글

▶ 법관의 대폭 증원을 주장하는 차○○ 판사의 글에 대하여 그간 익명 카페의 반응은 호의 일색이었음

▶ 최근인 10. 23. “질문 세가지 1) 판사 수가 2배로 늘면 재판방식을 확 바꾸는 판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심리범위와 강도, 변론시간을 대폭 늘리는 판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2) 1심 배당 사건 수가 절반으로 줄면 항소율, 항소심의 1심 파기율이 과연 얼마나 줄까요? 3) 판사 근로시간은 과연 줄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등장

- 이상과 현실 가운데 이상적인 지향만을 앞세우려는 분위기에 일침을 가함

▶ 이원화 제도에 관하여도 지속적인 통계 및 문제점 노출을 통해 막연한 이상 추구가 아니라 조직 관리의 필요성, 선발인사의 필요성 등을 비롯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대두될 수 있음

- 서울고법 TF 등 이원화 제도 연구반 지속 운영



- 2016년 11월경 차기 정기인사 관련 공지 ⇨ 2015년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원화 제도의 개선을 여전히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은 선명하게 전달할 필요 있음
 - 그 무렵이 되면 일선 법관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신임 대법원장님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신임 대법원장님 취임시까지 기다리자는 분위기가 될 수 밖에 없음 ⇨ 특별히 반발할 대상이나 계기가 모호해짐
- [신임 대법원장님 취임 후] ⇨ 인사권자 결심 정도 및 일선 법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2017년 하반기 즉시 폐지 여부 정책 결정 후 2018년 인사부터 시행 또는 ②추가적인 여론 수렴을 통해 추후 결정 中 선택 가능
- 2017년 폐지 결정 시의 시행 방안
 - ①각급 법원별 여론 수렴을 거쳐 2017. 12. **법원장 회의 안전으로 상정**
 - ※ 단 여론 수렴을 위해 각급 법원 판사회의 안전으로 삼을지 여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기본적으로 신중할 필요 있음
 - ②**법원장 회의 의결을 통해 이원화 폐지 방향 설정한 후 법관 전체 공지**
 - ⇨ 폐지 수순에 따른 실무검토를 통해 인사상 혼란 최소화
 - 신임 대법원장님의 정책 결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 기대



2014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2018. 7. 31.

기획조정심의관(鄭)

I. 검토 배경

- 2013년에 사법부는 상당한 평온기를 맞았으나 2014년 들어 사법부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인자들(ex. 타 국가기관 등)이 새 정권 초기에 각자 적응기·조정기를 거치는 동안 소강 국면이 찾아왔던 것일 수도 있음
 - 내부 정비 기간 또는 새로운 시도를 위한 준비 기간이 끝남에 따라 곧 거센 도전과 대치 국면이 시작될 수도 있으므로 경각심 필요
-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 분석과 향후의 변화에 대한 전망 필요**
 - 정권 초기의 여러 변수들(ex. 정부 요직 인사 등)이 정리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므로 향후의 전망이 가능한 시점임
 - 6·4 지방선거, 19대 국회 후반기 시작 등 중요 정치 일정 예정
- 전망 분석의 내용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
 -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전제로 복수의 대응 방향을 준비할 필요 있음
- **아래의 각 분야별로 향후 환경 변화 전망 ⇨ 이를 기초로 향후 사법부의 대응전략 수립 준비**
 - ①정치권, ②법조계 전반, ③언론계, ④법원 내부를 기준으로 분석



II. 정치권

1. [현황]

가. 개요

- 2013년 ⇨ ① 청와대의 정국 주도, ② 여의도 정치의 실종
 - ①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검찰 출신 인사 중용
 - ② 여당 중진의 역할 부재, 야권의 분열 ⇨ 잦은 국회 파행
- 2014년 최근 ⇨ 3대 선거[국회의장 선거, 여당 대표 선거, 지방선거]를 대비한 변화 움직임 감지
 - ① 청와대 ⇨ 다소 유연한 자세 추구
 - ② 여야 정치권 ⇨ 각개약진·분열 양상 심화

나. 청와대

1) 2013년

- ① 청와대의 정국 주도 **와 실세 비서실장**
 - 권력기관장 교체 과정, 공안 정국 등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일부 언론에서 '기춘대원군', '부통령' 등 비판 제기
- ② **검찰 출신 인사의 주요 보좌 라인 포진**

직위	성명	생년	연수원 기수	출생지	출신고	출신대
국무총리	정홍원	1944년	4기	경남 하동	진주사범고	성균관대
비서실장	김기춘	1939년	고시사법과 12회	경남 거제	경남고	서울대
민정수석	홍경식	1951년	8기	경남 마산	경북고	서울대

2) 2014년 최근

- ① 주요 화두는 '선거'와 '통일'
 - ① '선거' ⇨ 6·4 지방선거는 임기 중반기 정국 장악력 유지에 큰 영향 요소 ⇨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의 독주 스타일에 변화 감지



☑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임은 6일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부산을 중심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해 이대론 6·4 지방선거를 못 치른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강력한 경질 요구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는 해석이 많다.”(2014. 2. 7.자 조선일보 보도 내용)

- 선거에 부정적 영향요소에 대하여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예상 ⇨ 그 과정에서 여당의 목소리도 상당 부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될 것
- 선거를 위하여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각 또는 청와대 비서진 교체도 언제든지 가능함 ⇨ 특히 안철수 신당이 출범하는 3월 전 후에 가능성 있음

☑ 개각 거론 인사 ⇨ 유정복 안행부장관, 현오석 기재부장관 등
 ☑ 김기춘 비서실장도 교체설이 끊이지 않음
 ※ ①업무 스타일에 불만을 가진 일부 언론의 희망 섞인 전망
 ②선거를 치르는 데에 알맞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정국 운영 스타일
 ③개인적 사정(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설, 현재 외아들이 사고로 의식 불명)
 ④후임자 ⇨ 현경대, 홍사덕, 한광옥, 최OO, 김진선 등이 거론

- ② ‘통일’ ⇨ 이른바 ‘통일대박론’ 제창 ⇨ 작년의 ‘OO한류’와 더불어 당분간 대통령의 주요 화두가 될 듯

- [원인] 최근 북한의 불안한 정세(장성택 숙청 등) + 그동안 외교와 안보에서 좋은 이미지를 쌓아온 대통령의 선거 전략
- [착안점①] 사법부의 통일 대비 실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 [착안점②] 사법부 예산 요구 시 통일 관련 아이템을 검토할 필요 있음

▣ ② 사법부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유연성 증진 등 자세 변화 감지

- 주유엔 대표부 법관 파견 등 최근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
- 하지만 검찰·법무부와 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도 그러할지는 의문

▣ ③ 법관 출신 법무비서관 임명 ⇨ 원만한 관계를 위한 창구 확보

- 김OO 비서관: 1962生, 연수원 18기, 경북대 법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11. 변호사 개업[법무법인(유) 태평양]



다. 새누리당

▣ ① 유리한 정국 상황임에도 확실한 정국 주도권 확보 실패

- 모호한 당청 관계 ⇨ 필요한 정치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들어 청와대에 대한 건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고, 그러한 양상이 최소한 지방선거 전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복잡한 당내 역학 구도로 인하여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당내 중진의 역할 부재 ⇨ 구심점 상실

▣ ② 복잡한 당내 역학 구도 ⇨ 당분간 현 상황 유지 가능성

- 황우여 대표 신년사 화두 ‘先公後私’, ‘先黨後私’ ⇨ 당의 분열이 격정스러운 정치 일정이 많은 한 해라는 속뜻
- 실제로 전당대회 시기, 서울시장 후보 선출 등을 놓고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음
 - 황우여 대표 임기 만료는 5월 ⇨ ‘지방선거 후 8월 전당대회론’ (지방선거는 5월 선출되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치름)이 다수이나, 선거 전 쇄신 내지 안철수 바람 차단을 위한 ‘3월 전당대회론’도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중진들은 당권 경쟁 중
 - 서청원(7선), 이인제(6선), 김무성(5선), 최경환(3선), 김문수(경기지사) 등
- 대통령의 당내 정치적 대리인(‘보이지 않는 손’)은 여전히 부재
 - 청와대는 5월 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른바 ‘친박계’ 의원을 당선시켜 당내 장악력을 유지하려고 함

라. 민주당

▣ ① 지도부의 정치력·지도력 한계 노출

- 김한길 대표 ⇨ 당내 확고한 지지 기반 부재, 차기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 행사 가능성 미미 등으로 인해 **지도력의 한계 노정**

- 김한길 대표의 임기는 2015. 5.이지만,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당 대표 교체 여론 등이 대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6·4 지방선거를 위한 **캐치프레이즈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 ⇨ ‘정권심판론’ 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

■ [2] **당내 노선·계파 갈등 속 야권 연대 논의 진행**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측과 관계 설정 고심

■ [3] **최근 일부 판결 결과에 대하여 강한 불만 표시**

- 김용판 무죄 선고 ⇨ 당운을 걸고 있었고, 낙관적 기대가 너무 컸음

2. [전망]

가. 변곡점 ⇨ 3대 선거[국회의장 선거, 지방선거, 여당 대표 선거]

■ [1]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2014. 5.경]**

- 새누리당 이인제(6선), 황우여(5선), 정의화(5선) 의원 등이 물망

■ [2] **지방선거[2014. 6. 4.]**

- 현역 의원 상당수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 가능성
- 2017년 대선을 위한 교두보로 생각
- 청와대는 보궐선거 폭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현역 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를 최소화하려고 함(최근 정갑윤 의원 울산광역시장 불출마 선언)

■ [3] **새누리당 대표 선거[2014. 8.말경이 될 가능성 높음]**

- 중진들간의 경쟁·갈등 양상 지속

나. 정치적 역학 구도 변화 가능성 전망

■ **청와대**



- 지방선거 이전 ⇨ 선거 승리를 위하여 최대한 민심과 여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할 것
- 지방선거 이후 ⇨ 전열을 재정비하고 독주 체제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에 나설 것

■ 새누리당

- 지방선거 이전 ⇨ 선거 승리를 위하여 경제민주화 필요성 재천명 등 정책 방향의 일시적 수정 예상
- 지방선거 이후 ⇨ 당 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당청 관계 변화, 나아가 정국 주도권 만회 가능성 있음

■ 민주당과 범야권

-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지도부 변경 또는 정계 개편 가능성 있음

다. 제19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구성 전망

■ 위원장 ⇨ 이상민, 양승조, 김동철 의원 유력

- 모두 민주당 3선

■ 간사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유임說 ⇨ 이한성, 박민식, 김재원 등 검찰 출신 재선 의원說
- [민주당] 이춘석 의원 유임說 ⇨ 정성호, 문병호 의원說



Ⅲ. 법조계 전반

1. 개요

- **[현황]** 2013년의 각종 공안 관련 사건 ⇨ 2014년 정국에도 상당한 파장과 영향력
 -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서울중앙지법],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수원지법],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사건[헌법재판소]
 - 일부 언론의 평가 ⇨ ‘**新공안정국**’
 - 청와대의 정국 주도, 검찰 출신 보좌 라인의 전면 배치 등이 빚어낸 결과라는 평가도 존재
- **[전망¹]** 법무부·검찰에 우호적 상황 ⇨ 각종 **형사재판 관련 제도 변경 시도, 검찰 출신 대법관 추천 시도**
- **[전망²]**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 집중 ⇨ **헌법재판소법 개정 시도, 최고 사법기관 위상 도전 가능성**

2. 법무부·검찰

가. [현황]

- **한동안 내홍 봉합 ⇨ 현재는 상당히 안정을 되찾음**
 - 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 윤○○ 지청장 항명 파동 등으로 조직이 어수선한 분위기 ⇨ 새로운 총장 체제에서 조직 안정화
- **주변 환경은 법무부·검찰에게 우호적 ⇨ 다양한 시도 가능**
 - 지난 사법개혁 당시 이루어진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대한 반격의 기회를 늘 준비해오고 있음 ⇨ 19대 국회 상황 등에 따라 관련 입법 시도 가능성



◆ **검찰의 형사재판 관련 제도 변경 시도** ◆

▶ [검찰-반격의 기회 모색]

- 예컨대, 영장항고제, 참고인 구인 제도, 플리바게닝 등 ⇨ 수사의 편의성, 효율성 제고와 검찰의 영향력 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정 시도 계속할 가능성 상당

▶ [법원의 대응 준비]

- '2010 형사사법제도 TF' 등 운영 ⇨ 각 방안의 주요 내용, 각 방안별·단계별 법원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완료

☞ 예컨대, 개별 안건의 단점, 검찰 논리의 허점을 부각시키는 방안, 전체적인 관점에서 소위 '맞불 작전'으로 '수사권 조정' 등과 같이 검찰이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압박하는 방안 등 검토 완료

- 그 후 '2013 사법발전 TF' 등 운영 ⇨ 기존의 주요 논의 재점검

■ **현재 검찰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유력한 항목** ⇨ 상세 검토

- 검찰 출신 대법관 임명 시도
- 보호관찰관에 의한 양형조사제도 도입 시도

나. [전망과 대응 전략①] **검찰 출신 대법관 추천 시도**

■ **배경**

- 2012년 김○○ 후보자 낙마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
 - 실제로 차○○ 대법관님 후임으로 정○○ 검사장 제청 시도
- 9월에는 양○○ 대법관님이 임기를 마치실 예정임

■ **[전망]**

- 9월 대법관 제청을 앞두고 **대법관 1석은 다양성 확보를 위해 검찰 몫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더욱 강하게 펼칠 것으로 보임
 - 청와대 ⇨ 비서진 다수가 검찰 출신이므로 **'검찰 몫의 대법관'**이라는 **법무부의 논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가능성 높음**

■ **참고 사항**

☑ 야당 국회의원들 ⇨ **현직 검사의 대법관 임명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통과는 곤란할 것으로 보임



☑ 국회 연구보고서 ⇨ 일본 최고재판소의 사례가 다양성 강조 측면에서 실효[15인의 재판관 중 법관 6명, 검찰 2명, 변호사 4명, 법학자 1명, 행정관 2명]

■ [대응 전략]

- 현직 검사 대법관 임명 관행의 폐기를 전제로 단계적인 원칙적 전략 수립과 적절한 운용이 필요함

다. [전망과 대응 전략②] 보호관찰관에 의한 양형조사 제도 도입 시도

■ 배경

- 2013. 9. 법무부 측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을 차례로 접촉하여 도입 필요성에 관한 설명을 함 ⇨ 현재까지 법률안은 제출되지 않음(보호관찰소 이전 문제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전망]

- 보호관찰관이 수사와 공판 절차에서 검사 또는 법관의 명에 따라 양형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시도 가능 ⇨ 일반적인 양형조사 권한을 부여함

■ 문제점

- 이미 법원 실무에 정착되어 가고 있는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 검찰이 소속된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서 양형조사를 전담할 경우 피고인에게는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음
- 법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양형을 법무부에서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음

■ [대응 전략]

- 변호사, 법원조사관 등으로 구성된 양형조사위원회에 의한 양형조사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의원 입법 방식으로 추진



3. 헌법재판소

가. [현황]

- 최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다시 집중됨
- 높은 수준의 사회적 관심이 계속되면 헌법재판소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다만,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법원의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판결 결과를 기다려 이를 참고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폭발적인 관심을 끌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나. [전망]

- 헌법재판소의 위상 강화는 재판소원 도입 등 법원 재판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시도를 가속화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 등 중요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상을 강화

☑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

▶ ① 재판관 정년 연장, ② 위헌 형벌 규정 재정 소급효 도입, ③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 ④ 재판소원 도입

▶ [최근 확인 결과]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리 추진 전략 채택

①, ② ⇨ 즉시 추진

③ 한정위헌의 효력 관련 ⇨ 정책 결정 보류 [실무진은 추진 의사가 있으나 내부적으로 신중론도 대두]

④ 재판소원 ⇨ 사실상 불추진

다. [대응 전략]

- 적극적인 상황 인식 필요 ⇨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위상 유지는 타 국가기관과의 관계, 국민의 재판 승복율과 만족도 측면에서도 중요



- 대법원의 기관 이미지가 헌법재판소에 비하여 반드시 우세하다고 장담하기 어려움
 - 2013년 파워 조직 국민 인식 평가 조사 결과 ⇨ 영향력: 대법원 11위 vs. 헌법재판소 4위, 신뢰도: 대법원 6위 vs. 헌법재판소 3위
-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상징 조작에 유리한 요소 다수 구비
 - ① 정치적 중요 사건을 처리하고, (추상적) 규범통제에 그치는 업무 특성
⇨ 주목도를 높이면서도 孤高한 이미지 구축에 유리
 - ② ‘헌법 수호 기관’ 과 ‘기본권 보장 기관’ 이라는 이미지 ⇨ 특히 영향력·신뢰도 홍보에 유리
 - ③ 헌법재판소는 최고 사법기관 위상에 관하여 적극적 문제 제기 ⇨ 이미지 개선에 지속적·적극적 노력
- 표면적 전략 ⇨ 이슈화에 대한 직접적 대응은 자제
 - 직접적 대응을 할 경우 조직 이기주의로 치부될 우려 ⇨ ‘권한 배분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당위론이 지지를 얻게 되어 오히려 권한 재분배 논의를 활성화시킬 위험이 있음
- 실질적 전략① ⇨ 대법원 이미지의 정교한 포지셔닝
 - ①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
 - ‘삼권분립의 원칙’ 을 상기시키고 ‘삼권’ 의 한 축은 사법부임을 강조
⇨ 헌법재판소는 ‘삼권’ 의 한 축이라 할 수 없음
 - ② 원칙적·일반적·포괄적 사법기관
 - 세계 모든 나라에 존재하고 모든 재판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원칙적·일반적·포괄적 사법기관 ⇨ 헌법재판소는 예외적·특수적·한정적 사법기관
 - ③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실질적 권리 구제 기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직접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정의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기관 ⇔ 헌법재판소는 헌법보장기능만 수행

■ **실질적 전략**② ⇨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적극적 홍보**

● **헌법재판소를 의식한 적극적 홍보 전략의 필요성**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계에서는 더 이상 ‘최고 사법기관의 위상을 선점하고 있는 여유로운 방어자’가 아님을 깨달아야 함

● 대법원 이미지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활용**하여야 함

- **강점** ⇨ ①삼권분립의 한 축, ②전국적 조직, ③2,600명 이상의 법관 pool, ④다양한 사건의 지속적 이슈화 가능

- **약점** ⇨ ①분쟁 해결 직접 관여[민사소송은 절반의 패소자를 비우호세력으로 발생시키고, 형사소송은 일종의 기본권 제한 작용], ②검찰과 이미지 동반

■ **구체적 전략** ⇨ 위 **실질적 전략**①, ②의 **구체적 적용**

● ① 각종 홍보물 개편, 뉴미디어 홍보 활동 강화

- ① ‘최고 사법기관은 대법원’ 명제를 강조하는 내용, ② 헌법재판소와 관계를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시킴

● ② 국민적 영향이 큰 사건의 지속적 이슈화를 통한 주목도 제고

- 미국 연방대법원의 공개 변론 녹취 파일 홈페이지 탑재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

● ③ 학생 상대 법교육, 공민교육에서 관련 내용 교육 강화

● ④ 조직 이미지 진단 필요

- 전문적 수단을 활용하여 대법원의 조직 이미지를 진단하고 향후 이미지 관리를 위한 정책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한변호사협회

가. [현황]



■ **신임 대한변협회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갈등이 고조되는 기현상이 발생하였음**

- ▶ 2013. 4. 울산 변호사 감치 사건으로 인한 긴장 관계 형성
- ▶ 2013. 8. 재판연구원 관련 간담회에 대하여 강한 어조의 논평 발표

● 변협이 사법부를 동반자로 보지 않고 극복의 대상으로 보아 대결 구도를 조장하고 심화시키려 하는 것이었음 ⇨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통한 존재감 과시 목적

- ①변호사 업계의 구조적 변화는 변협 회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업 변호사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압박감 등을 느끼게 하였음
- ②변협 집행부는 부족한 지도력을 만회하기 위하여 다수 회원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이용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였음

■ **대한변협은 최근 그간의 갈등 상황 조장이 스스로에게 득보다 실이 많았음을 자각한 것으로 보이나, 서울변회는 여전히 법관평가 하위 재판장 실명 공개를 추진하는 등 고도의 긴장 관계를 조장**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변회 사이에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는 방법으로 무마한 상태임

나. [전망]

- **대한변협은 법원과 동반자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보임**
- **서울변회는 지도부 구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유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음**

다. [대응 전략]

- **동반자 관계의 복원·정상화는 필수적임**
- ① [소극적 측면] 대결 구도를 유지할 경우 돌발적인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임 ⇨ 불필요한 행정력이 지속적으로 낭비됨

- ② [적극적 측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해 나가는 데에 법조삼륜, 특히 재야의 참여와 협조는 필수적임 ⇨ 실질적으로 국민과 가장 빈번히 접촉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함
- ③ [실질적 필요성] 사법부 입장에서도 제19대 국회에서 주요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변협의 협조가 필수적인 안건이 있을 수 있음 ⇨ 예컨대, 양형조사관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 **다만, 관계 복원·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신뢰의 회복임**

- 일시적으로 관계를 봉합하는 것은 결국 제2, 제3의 갈등을 가져올 수 있음 ⇨ 진정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상대로 하여금 품위 있는 파트너로서의 자세를 유지할 것을 일깨워주어야 함

▣ **관계 복원 후에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유지하고 강화함**

- 변협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마련
-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 방안' 등 개별 사안에 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타당하고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를 경우에는 적극적인 협조 또는 공조도 가능



IV. 언론계 등

1. 언론계

가. [현황]

■ 2013년 ⇨ **언론기관의 성향에 따라 보도 경향이 달라짐이 일반적**

● 보수 성향 언론

-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문제점 부각 ⇨ 나꼼수 판결과 안○○ 판결 보도 등
- 기타 각종 무죄 판결 비판 ⇨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김일성 묘소 참배, 4차선 도로 점거시위 사건 등 보도

● 중도·개혁 성향 언론

-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거나, 재판에 대한 원색적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

■ 2014년 **최근** ⇨ **주요 사건 판결 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안의 유불리에 따라 보도 경향이 결정되고 있음**

● 최근 김용판 무죄 판결 선고도 그 좋은 예임

- 보수 성향 언론 ⇨ ‘검찰(또는 법원)을 비난하는 야당’을 비판하는 취지의 보도
- 중도·개혁 성향 언론 ⇨ 법원을 비판하는 취지의 보도, 다만, 기사는 주로 재판부의 증거 판단을 문제 삼고 있고, 사실·논평은 사법부 독립을 문제 삼음

● 한화 김○○ 회장 등의 재벌들에 유리한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도 비슷한 분위기임

나. [전망]

■ ① **주요 사건 판결 선고 관련 보도** ⇨ **위와 같은 최근의 경향이**



반복·지속될 것

- 특히 원세훈 사건, 이석기 사건 등 공안 사건 판결 선고가 잇따를 예정임
 - 법관 인사이동 시기를 앞두고 주요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집중될 시기임
 - ⇒ 김용판 사건에서 시작된 ‘사법부 독립’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

■ [2] 사법 개혁 관련 보도

- 현재는 검찰 개혁 논의가 소강 국면이나, 검찰 조직이 안정되고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논의 급부상 가능성 ⇒ 자연스럽게 법원 개혁 논의로 확대 전개될 가능성 존재
 - 검찰에서는 검찰 개혁에 집중되는 관심을 분산시키고 개별 개혁과제의 추진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법원 개혁과 연계하려고 시도할 가능성

☑ 사법개혁 관련 적극적 보도의 실질적 이유

- ① 오직 법원만이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는 부정적 시각
- ② 검찰·헌재 등 다른 기관과 법원 사이에 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견제 심리
- ③ 향후 정치적 사건에서 자기 진영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할 목적 등

■ [3] 의도적 공세 목적 보도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서 자기 진영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판사 개인 또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이념 공세를 벌일 가능성
 - 주류 보수 언론은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좌편향되어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음

☑ 의도적인 공세 목적 보도의 구체적 방법

- ① 판사 개인의 경력, 과거 판결 등을 조사하여 인신공격 감행
- ② 유사 사안을 단순 비교한 후 ‘오락가락 판결’, ‘튀는 판결’, ‘국민 일반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
- ③ 막말 등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과 일탈 행동을 부각
- ④ 각종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불구속 재판 원칙 등 법원의 형사 사법 원칙이나 양형 등을 공격



☑ 최근 'TV조선'의 '사법개혁 특집 기사' 보도 예정 내용의 목차

①오락가락 판결...법적 안정성 해친다

②유전무죄 핵심에는 고무줄 양형이

③국민참여재판...여론 재판이 대안인가?

④벼락 판사, 막말 판사

⑤대법원 업무 부담 심하다...판사들이 자초?

⑥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업무 중복으로 국민들 혼란

☞ '사법개혁 특집 기사'라는 명목 하에 전형적인 의도적 공세 목적 보도를 기획함

다. [대응 방향]

▣ 지나친 비판 조의 논평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 정립

- [개요] 주요 사건 판결 선고에 관한 언론기관(또는 정치권)의 지나친 비판·논평에 대응하는 기본원칙이 필요
- [문제의식] ①개별 사건별로 대응하다 보니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움, ②각급 법원 법관들은 법원행정처가 여론의 지나친 사법부 비판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즉, 법관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 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음
- [구체적 내용] 적극적으로 대응할만한 사안, 대응할만하나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대응하지 않는 사안, 대응할만한 가치가 없는 사안 등을 나누어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①사안에 관한 신속한 대응, ②법관들의 불만 발생 예방

▣ 뉴미디어를 활용한 대응 전략 강화 ⇨ 리스크 센싱 기능 강화와 조기 대처

- 2012. 11. '대국민 소통 및 사법부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방안' 시행 ⇨ 공보관실에 온라인소통팀 신설, 외부 전문가 채용(홍보 전문가, 방송 작가 등)
- 뉴미디어의 중요성과 특수성 감안 ⇨ 비정형성, 쌍방향성, 즉시성, 엄청난 전파성 등 ⇨ 전담 대응팀, 맞춤형 전략 필요 [최근 주요 회사 및 공공기



관 홍보 업무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

● **홍보위기 상황 발생 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대처**

- [신속한 탐지 ⇨ 초기 진화 ⇨ 즉각적인 해명과 대응] ⇨ 그 과정에서 SNS, 페이스북, 트위터 등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 **홍보 위기의 조기 탐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실행**

-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SNS 모니터링 실시

■ 8개의 주제어[대법원, 대법관, 법관, 판사, 법원장, 판결, 재판, 법원]가 포함된 언급 확보 ⇨ 전체 언급 빈도, 리트윗 횟수 등 제공 ⇨ **온라인과 뉴미디어를 통해 법원 관련 특정 내용 전파 시 신속한 조기 감지 가능**

■ 외부 전문업체 ⇨ 타파크로스 [문화체육관광부, 삼성화재, 신한카드, 폭스바겐 등도 주요 고객 중 일부]

- 공보관실에서는 1주일 단위로 SNS 모니터링 주간 보고서 작성 및 제공

▣ **언론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설명과 설득**

● ①사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는 점, ②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정치적 환경 변화로부터 절연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함

- 특히, 개별 사건의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을 그대로 법원 개혁의 당위성과 연결시키는 논리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근본이념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주지시킴

▣ **언론과의 스킨십 강화 등**

● 법원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금이 스킨십 강화의 적기임

-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에 비해 **법원과 언론 사이의 거리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현장 출입 기자들의 불만**어린 시각

● [리스크 센싱 기능 강화] 출입 기자들을 수시로 접촉하고 언론의 관심 사안과 취재 활동, 검찰과 정치권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



▣ 재판 절차 투명화와 국민과의 거리감 해소

- 법관들이 직업인으로서 일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함으로써 국민과의 거리감을 해소하는, 보다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2. 감사원 관련

가. [현황]

▣ 2012. 6.경 특정업무경비 실태 감사 실시

- 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이후 참여연대가 시민 감사 청구 ⇨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 실시

▣ 감사 결과로서 부적정 집행에 대한 “機關 注意” 통보가 계획되었다가 취소됨

- 헌법기관 중 집행지침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하다는 지적을 받음

지적 항목	지적 사항
사용 내역 지출 증빙에 관한 사항	현금수령증만(75%)으로 지급하거나, 지출내역서(16%)에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 제27조의 구체적 사유 및 최종채주 미기재하여 집행의 투명성 부족
각급 법원장 사법행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	판례자료조사수집비 지급하여 개인별 월정액 초과
교육 파견자 사법행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	특정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게 경비 지급
사법운영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	집행내용확인서만을 받고 지급하여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미확인

- 감사원 지적 사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집행상의 문제점 존재
 - ① 특정업무경비를 사실상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
 - ②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의 미비

나. [전망]



▣ 특정업무경비에 관한 **지속적인 실태 감사** 가능성 ⇨ 부정적인 감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상당한 피해 우려**

- ① 기획재정부의 특정업무경비 **예산 삭감** 예상
- ② **언론 보도**로 인한 사법부 신뢰 훼손 우려
- ③ 시민단체의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우려
- ④ 국회의 인사 청문회,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예·결산심의에서의 **자료·질의 요구** 우려

다. [대응 방향]

▣ ① **법원장에 대한 개인별 월정액 지급 기준 마련**

- 연간 월 평균 30만 원 이내 조정

▣ ② **지출 내역 제도 개선, 미개선 부분에 대한 감액**

- 집행 원칙에 충실한 지출 내역 관리 필요

▣ ③ **판례자료조사수집비·사법행정활동비의 대상자와 금액 조정**

- 행정 업무 담당자에게 판례자료조사수집비 대신 사법행정활동비 지급
- 판례자료조사수집비 단가 상승에 따라 사법행정활동비 현금 지급기준을 위 개인별 월정액 범위 내로 감액하여 조정

▣ ④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의 전환 추진**

- 장기적 과제로서 추진할 필요 있음



V. 법원 내부

1. 내부 소통 강화와 조직 문화 개선

가. [현황]

▣ 법원 공동체 내 다양성 증가로 인한 갈등 요소 확대

- 신세대 법관, 여성 법관, 경력 법관 등 다양성 증가 ⇨ 세대, 직책, 성별 간 갈등 요소 확대
- 조직의 거대화, 사회와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장기간 유지되어 오던 법원 공동체의 단일성, 정체성 해체 경향

▣ 법원 내의 갈등 요소 확대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 [전통적인 갈등 요소]

- 과도한 업무 부담, 사기·자존감 저하 경향, 기대보다 낮은 보수와 복지 수준, 권위주의와 폐쇄성

● [새롭게 대두되는 갈등 요소]

- 세대 간 갈등 ⇨ 베이비 붐 세대, 386세대, 포스트 386세대, N세대, Y세대 등
- 직책 간 갈등 ⇨ 계층화, 고착화된 직책 구조, 피라미드식 승진 인사제도, 평생법관제의 시행에 따른 고법부장·고법판사 근무 기회의 감소, 배석판사 근무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불만감과 좌절감

- [젊은 법관들의 불만] 특히, 최근 급격한 사법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법원 인사 체제의 최대 장점인 '예측 가능성' 감소에 따른 불안 ⇨ 법관으로서의 '라이프 사이클' 에 대한 조감도 제공 희망

- 성별 간 갈등 ⇨ 여성 법관 수의 폭발적 증가, 세대 간 갈등 및 직책 간 갈등과 중첩되어 심화되는 경향

▣ 원활한 내부 소통의 중요성

- 각급법원은 국민과의 소통의 전초 기지



- 원활한 내부 소통이 가능한 '열린 조직문화 구축'의 중요성 ⇨ 단결력과 추진력 강화, 원활한 외부 소통의 굳건한 기반으로 작용

나. [대응 방향]

■ ① 단기적 개선 방안

- 교육·연수 관련 프로그램 개선·확충
 - 법관의 자긍심, 도덕성, 덕목 등에 관한 연수프로그램 확충, 조직생활의 이해 및 세대, 직책, 성별 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 재판부 전원이 함께하는 소통 프로그램 실시
- 전문심리상담 및 고충해결센터 활성화
- 내부자 신고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직장 내 성희롱 등 관련
- 법원 구성원의 문화 모임 지원, 내부 소통을 위한 문화 축제 지원
- 법관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실시
- 연가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 ② 장기적 개선 방안

- 과도한 업무 부담의 경감
 - 법원공무원 증원 ⇨ 2014년 297명 증원 확정, 추후 지속 노력
 - 제1심 단독화 추진, 판결문 작성 간이화 추진 ⇨ 지속 추진
- 법원 구성원의 복지 수준 향상
 - 안식년(월) 제도 도입 검토, 휴양시설 지원 확충, 법원 직원에 대한 국내 대학원 연수 과정 선발 확대 등
- 법관 인사제도 개선 노력 지속 ⇨ 예측 가능성 제고 등
 - 제도 개선 노력 지속 ⇨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제도 구축



- 특히 변화하는 사법 환경 등을 고려하여, 향후 법관으로서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도 제공을 위해 노력

■ ③ 내부 소통과 공감을 위한 정책예고제 ⇨ 조만간 시행 예정

- [현황] 현재 주요 정책 소개 및 의견 수렴 ⇨ 부정기적, 통일적이지 않은 다양한 방식 활용 등 ⇨ 일방향적, 하달식 정책 추진으로 오해되거나,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
- [개선 목표] ① 각종 정책과 제도의 내용 설명을 통한 공감대 형성, ② 사전 의견 수렴절차의 실질화를 통한 정책 보완
- [개선 방향] 내부 소통과 공감을 위한 정책예고제 시행
 - 행정상 입법예고제와 행정예고제의 주요 취지 착안 ⇨ 적절하게 변형
 - 각종 정책을 주요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정책예고제의 내용과 절차를 차별화하여 운영
 - 정책의 유형별 구분 기준, 정책예고제의 내용과 절차 차별화 기준 ⇨ 구체적 기준은 추후 확정(일용 법원구성원의 업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및 중요도, 정책의 신규성, 이해 상충 여부, 전체적인 공지 방법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음)
 - 코트넷 홈페이지 등에 정책예고제 게시판 등을 신설하여 활용

2. 법원공무원단체

가. [현황]

- 2013. 5.~6. 근무환경개선위원회 구성·활동
 - 42개 논의 주제 선정 ⇨ 32개 결론 도출
- 2013. 7.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보류
 - 전공노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
- 2013. 11. ‘법원공무원 직종개편안’ 확정



- 별정직 법원경비관리대원의 직종 전환 여부, 계약직 속기사의 직종 전환 문제 등에 관하여 이슈화 시도할 듯하였으나, 무리 없이 시행

- ※ 2013. 12. 법원경비관리대 명칭 변경 ⇨ 숙원 해결로 사기 진작

■ 2014. 1. 전공노 제7대 임원 선거

- 부정·부실 선거 논란으로 2014. 2. 현재까지도 선거가 마무리되지 않음 ⇨ 그 여파로 법원노조도 대외적 활동이 거의 없는 상황임
- 당분간 전공노는 지도부 부재 상태를 맞게 되었음

나. [전망]

- 상급단체인 전공노의 혼란, 이슈 부재 등으로 당분간 법원노조의 활동은 위축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전공노 임원 선거 문제가 정리되면 대외적으로 공무원연금 문제 이슈화 시도 예상

- 공무원연금 문제 ⇨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완전 통합하는 등으로 개혁하려는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한 논란을 가리킴

- 사법부 지도부를 향한 구호가 아니라 정부 시책을 향한 구호이므로, 법원 공무원 내부 결속을 위한 의미는 있을지언정 법원공무원 노사관계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 [대응 방향]

- 능동적 대응: 노조 대응 조직과 인력의 강화

- 대응 조직 정비

- 정보 보고·공유 체계 정비

- 법원행정처 내 정보 보고·공유 체계 정비 ⇨ 사안별 정보 보고 체계는 유지하되,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유하는 체계 점검

- 각급 법원과 법원행정처 간 정보 보고 체계 정비 ⇨ 보고 책임자의 명확화, 코트넷 커뮤니티 개설·운영



- 의사 결정 체계 정비

- 실·국별 역할 분담 내역 재확인·구체화·숙지
- 법원행정처에 가칭 ‘노사 정책 조정 위원회’ 설치 ⇨ ①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과 인력운영심의관실 담당자가 참석하는 **일반 회의**와, ②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실·국장이 참석하는 **확대 회의**

- 정책 집행 체계 정비

- 창구를 다원화하되, 각각의 창구는 일관된 입장을 추구 ⇨ 원칙적·이성적 사항과 세부적·감성적 사항의 분리

● 기존 인력의 질적 역량 강화

- 법원행정처 인력

- 국내 학위 과정 위탁 교육 제도 활용
- 노사 관계 전문 변호사 인력 풀 활용
- 공무원노사관계포털 등 다양한 외부 자료 이용

- 각급 법원 인력

- 공무원단체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법원공무원단체 업무 편람’ 활용
- 공무원노사관계 교육 과정 개발·수강 주선, 외부 강사 초청 강연 실시

● 전문 대응 역량의 양적 확충

- 기획조정심의관실 사무관급 인력 배치 시 전문 인력 활용
- 고용노동부·안전행정부 제공 컨설팅 적극 활용

▣ **수동적 대응: 노조 활동에 대한 대응**

● 연례적 활동에 대한 대응

- 노조 간부 회의 등 ⇨ 동향 파악·분석, 대책 마련

● 돌발적 활동에 대한 대응

- 내부 전산망을 이용한 성명서 게시 ⇨ 대화, 경고 또는 고발 여부 검토
- 현수막 설치·1인 시위·집회 개최 ⇨ 사전·현장·사후 대응 매뉴얼. 끝.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 분석

2018. 7. 31.

기획조정실

1. 선고 요지

▣ 서울고법 2014노762 내란음모 등

- 제9형사부 ⇨ 재판장 이○○ 부장판사, 주심 진○○ 판사

▣ 1, 2심 선고 결과 비교

- 공소사실별 유무죄 내역

공소사실		1심	항소심	
내란	선동	유죄	유죄	파기자판
	음모	유죄	무죄	
국보법 위반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유죄	유죄	
		이유무죄	이유무죄	
		무죄	무죄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별 양형 내역

피고인	인정 죄명	구형	1심	항소심
이석기	내란선동 국보법위반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이○○	국보법위반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조○○	국보법위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김○○	내란선동 국보법위반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김○○	국보법위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홍○○	국보법위반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한○○	국보법위반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내란음모죄 무죄 이유

- ①이 사건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음모죄의 주체가 될 수 있기는 함
 - RO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 ∵ RO에 관한 제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나, 조직 체계·구성원 등에 관한 것은 추측 진술에 불과하므로
 - 그러나 RO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회합 참석자들은 어느 정도 조직화된 다수인으로서 내란음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②하지만, 회합 참석자들이 피고인 이석기의 선동에 따라 내란범죄의 실행에 합의하는 단계에는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이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여야 하고,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 즉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의 윤곽은 어느 정도 특정하여 합의하여야 함
 - 회합 참석자들이 구체적 준비방안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함

2. 여론 동향

가. 정치권

- **새누리당** ⇨ **부정적인 평가 속에 대외적으로는 신중함 유지**
 - “사법부의 결정인 만큼 일단 존중은 함, 그러나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러움, 아직 대법원의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까지 결과를 지켜보겠음”
 - 내부적인 분위기는 비판적인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짐
- **새정치민주연합** ⇨ **“2줄 논평”, 역풍을 우려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
 - “사법부의 판결을 주목함, 앞으로 최종심에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가감 없이 가려지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음”
 - 최대한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임



■ **통합진보당** ⇨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

- “사실상 무죄임이 인정된 것임, 내란 선동 혐의의 유죄 선고는 끼워 맞추기식 정치재판, 대법원에서는 내란 선동 혐의 역시 무죄로 판명날 것”

나. 언론기관 보도 내용

■ **전반적 분위기**

- 판결이나 재판부에 대한 비판에서는 한발 물러난 상태에서,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세월호 사건 등 다른 이슈에 다소 밀리는 듯한 분위기 ⇨ 심층적인 분석 기사나 의견 표명이 상대적으로 적음

일선 기자들의 의견

- ▶ **연합뉴스 이00 기자** ⇨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결론이 뒤집힌 것이 의외였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충분히 이해가 됨, 기자들의 의견은 소속 언론기관 입장에 따라 나뉘고 있음”
- ▶ **KBS 이00 기자** ⇨ “양측 입장을 절충한 절묘한 한 수라는 것이 다수, 다만, 여전히 내란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크므로 그들의 행동을 내란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을 가지는 기자들도 있음, 보수 성향의 기자들도 핵심 혐의가 무죄가 되기는 했지만 형이 꽤 높게 나와서 수궁함, 진보 성향의 기자는 핵심 혐의가 무죄가 되었는데도 형이 높다는 점에 대하여 불만, 김00 변호사가 한 발언(내란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무죄라는 말)이 맞는지 궁금해 함”
- ▶ **뉴스토마토 전00 기자** ⇨ “고개가 끄덕여지는 결론이고 기자실 반응도 좋음”
- ▶ **조선일보 최00 기자** ⇨ “곧 이 판결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갈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김”

■ **성향별 보도 태도**

- 보수 언론(조·중·동) ⇨ 중립적 입장 + 내란음모 무죄 다소 비판

특히 양형이유를 강조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국가기간 시설 파괴와 전시에 어떻게 행동할 것 인지를 논의했음이 명백하고 녹취록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사회분열과 혼란을 조장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내용 부각

- **진보 언론(한겨레·경향) ⇨ 중립적 입장 + 내란음모 무죄 긍정 평가**

특히 무죄이유를 강조

▶재판부가 **RO의 실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부각

■ **기타 보도 내용 ⇨ 각계 입장 등**

- **서울고법 공보관 인터뷰 내용**

- 채○○ 고법판사 ⇨ “현직 국회의원이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내란을 선동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내란음모죄는** 범죄의 주체성은 인정되나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라는 취지입니다.”

- **이석기 피고인 측**

- 김○○(이석기 피고인 변호사) 인터뷰 ⇨ “내란음모가 무죄면 내란선동도 당연히 무죄입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압감의 표현이 아닌가**”

- **법무부의 입장에 관한 분석 보도**

-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평가**(ytn, Newsis)

-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관한 분석 보도**

-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정당을 해산해야 할지 말지를 먼저 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뉴스y)

-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Newsis)

- 이번 재판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에서는 이석기 의원 측에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조선일보)

3. 향후 전망

가. 국회

▣ 대법원 국감에서 가장 큰 이슈로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

- 특히 새누리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반면, 새정치국민연합은 보수적인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중립적인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분위기 예상

나. 헌법재판소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미칠 영향

- 정당해산 결정에 부정적 요소
- 1]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음
 - 법무부의 그동안의 논리는 ‘RO=통진당’ 이므로 위헌정당이라는 것
 - 130명 이상의 조직원을 가진 RO의 실체가 인정되었다면 그 자체가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입증할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을 것임 ⇨ 그러나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조직적인 위헌성’ 이 직접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 2]내란음모죄에서의 ‘구체적 합의’ 를 인정하지 않음
 - 이석기 등 일부가 ‘선동’ 은 하였으며, 조직원들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없음 ⇨ 일부 개인의 일탈 행위이지 조직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해석 가능
- 정당해산 결정에 긍정적 요소
- 1]내란선동죄는 인정되었음



- 선동의 상대방인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강연 내용에 공감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의 실행을 결의하고, 나아가 이를 실행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
- ②회합의 조직적 성격도 인정(RO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방론으로 실시)
 - 적어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원들 중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고, 그들 사이에는 피고인 이석기를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내란음모죄의 주체가 될 가능성도 갖춤)
- ③국가보안법위반 역시 대부분 인정
 - 단순한 개인의 서적 보유 등의 행위가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이름을 걸고 한 이 사건 회합 자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위 각 행위를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것임
 - 한 두 명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간부진 다수(7명의 피고인) 모두가**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
 - 특히, 이석기 피고인이 소지한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문건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시 ⇨ 이는 통진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이적성이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해산 결정에 긍정적 요소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2013. 5. 12. 회합의 성격에 관하여, 이석기 피고인 등이 자신의 피고 사건에서는 **통합진보당의 정세강연회**라고 주장하는 반면, 통진당 측이 현재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는 통진당의 공식 모임이 아니라** 이석기 피고인 등 일부 당원들의 **돌발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 ⇨ 법원의 판결과 소송기록이 현재에 송부되면 그 주장에 모순이 드러나게 될 것임
- 종합 검토
 - 1심의 결론보다는 정당해산 결정에 부정적 요소가 증가하였으나,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고 결론은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오히려 현재가 충분한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통진당이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도 형사소송법이 준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였음 ⇨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

☑ 2014. 4. 23. 서울변회 개최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절차규범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 증명의 정도에 관하여, ①형사사건처럼 법관이 유죄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②민사사건처럼 합리적인 판단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뉘기도 함

■ **헌법재판소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①법원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히려 현재로 하여금 다양한 결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 것임 ⇨ 현재의 결론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본 전제가 충족됨
- 그동안 독자적으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법원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심리 결과를 기다려 이를 참고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심리 방식 자체로는 폭발적인 관심을 끌지는 못함 ⇨ 하지만 결론에 대한 관심 증폭으로 인하여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
- 높은 수준의 사회적 관심 ⇨ 헌법재판소의 위상 강화 ⇨ 재판소원 도입 등 법원 재판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시도를 가속화하는 동력으로 작용
- ②만일 현재가 이 사건에 대법원의 공개변론 중계방송과 비슷한 방식의 변론 중계방송을 시도하게 된다면 사회적 주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흥행에 유리한 다양한 요소

- ① '해산이냐, 아니냐'라는 이해하기 쉬운 간명한 쟁점
- ② 이정희 대표, 황교안 장관 등 지명도 높은 유력인사 직접 변론
- ③ 특히 이정희 대표에 대한 비호감적인 사회적 관심이 여전한
- ④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쉽게 예상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결론



- 현재까지는 현재 내부에 **변론 중계방송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하지만, 긍정적 효과가 실시 방식에 대한 부담 등 부정적 요소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입장 변경 가능성도 없지 않음
- ③ 현재는 **최종 결론의 시기**를 대법원 판결 시기를 고려하여 자신들의 **존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로 조절할 것**으로 보임
-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려 할 가능성 있음
- 재판소원·한정위헌 결정 등의 이슈, 개헌 논의 등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로 선고 시점을 조절할 것
- ④ 더 나아가 **종국적인 결론에서도 그러한 정치적 고려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과감한 정당해산 결정의 기대 효과

- ① 보수적 정치 세력과 일부 여론을 확실한 우군으로 확보
- ② 법원에 비하여 **선명하고 강한 이미지** 선점
- ③ 결정 이유에서 **법원의 사실 인정에 관하여 우회적·간접적으로 비판하여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긍정적 명분** 축적

4. 대응 방향

가. 對 국회

▣ **국감에서 여당의 거센 비판에 대한 다양한 대응 논리 개발 필요**

- ① 일부 무죄에도 불구하고 **높은 형량은 어느 정도 유지한 재판부의 깊은 고민의 결과임**을 강조
- 특히 **양형이유**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대응에 적극 활용하여야 함
- ② 판결 내용이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비판의 확대·증폭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처**
- 다만, 현재와의 관계, 재판소원·한정위헌 결정 등의 이슈 등을 고려할 때 **표현과 내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현재가 법원의 판결에 기속되



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음을 설명하여 양 기관의 독립성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절차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름을 강조하여야 할 것임

- 즉, 법원의 형사재판절차와 현재의 위헌정당해산심판절차는 여러 가지 면
에서 준별되는 것임을 강조

☑ 답변 假案

☞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내려진 결론에 헌법재판소가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겠으나, 유죄에 관한 고도의 확신을 요하는 형사재판과 민사소송법
을 준용하는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절차적으로 상당히 다르므로, 법원의 재
판 결과가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 對 헌법재판소

▣ 위와 같은 현재의 시도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정치권·언론기관을 상대로 형사재판과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차이점
을 강조·설명
- 현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야 함

▣ 대법원의 기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존의 노력 계속**

- 既 보고된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세적 대응 전략 검토’ 참조. 끝.

4월 총선 이전 국회 전망

2016. 1. 19.

1. 여야 대치 정국 전개

■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

● 새누리당

- 1. 18. 국회 운영위원회 새누리당 단독 소집 ⇒ 권성동 의원 등 22인 2016. 1. 11. 발의한 국회법¹⁾ 개정안²⁾ 고의 부결 ⇒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87조 제1항³⁾에 따른 본회의 안건 상정 요구
-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1. 19.자 언론 인터뷰 『 국회의장이 야당에 ‘선거구와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안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 고 압박하면 야당이 협상에 들어올 것임

● 더불어민주당

- 이종걸 원내대표 1. 19.자 원내대책회의 발언
 - 국회의 역할을 끝없이 축소하려는 정부, 여당의 반의회주의적 도발을 좌절시킬 것임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1. 18.자 기자회견
 - 새누리당 단독의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은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인 꼼수이자 향후 국회절차를 모두 부정한 의회 파괴행위임

● 향후 전망

-
- 1)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에 관한 현행 국회법 제85조는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체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여 쟁점 법안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 2)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 3)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해 7일 이내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 정의화 국회의장 1. 19.자 언론 인터뷰
 -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표명
- 다만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국회의장을 계속 압박할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만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여야 대치 정국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 19대 국회 남은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총선 전략으로 연계할 가능성 높음

■ 경제활성화법/노동관계법 처리

- 청와대가 조속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는 기업의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과 ‘노동관계법’ 은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가 더욱 어려운 형국임
- 다만 안철수 의원을 주축으로 창당을 준비하는 ‘국민의당’ 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갖추고 상임위에 진출할 경우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으면서 극적 해결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됨

■ 선거구 획정 법안 처리

-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7석을 줄여 놓어준 지역구를 최대한 살려야 하고 시급한 경제활성화법 등을 통과한 다음 선거구 획정을 하자는 입장
-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과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 수 결정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투표 참여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제도 개혁을 먼저 합의하자는 입장

2. 여야 총선 국면 돌입

■ 새누리당

- 야권 심판론 제기

- 야당의 발목 잡기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처리가 지연됨을 강조
-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의석수 확보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
- 야당의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 을 잠재우는 한편, ‘야권 심판론’ 을 20대 총선 슬로건으로 내세울 가능성 높음

- 공천을 둘러싼 내분 격화

- 전략 공천, 내부 경선 방식 등을 둘러싸고 공천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그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 있음

■ 야당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경쟁 심화

- 더불어민주당은 “정통 야당 재건” 을, 국민의당은 “넓은 야당 추방” 을 각기 슬로건으로 하여 국민 지지, 특히 호남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
- 20대 총선 결과에 따라 차기 야당 대권주자가 급격히 부상할 것으로 보임

- 야권 통합 논의

- 다만 선거에 임박할수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론 정의당, 국민회의(천정배 의원 주도) 등 전체 야권을 상대로 하는 통합과 연대 논의가 힘을 얻을 것임

3. 상고법원안 관련

■ 4월 총선 이전 전망

- 여야 대치 국면으로 고유법 심사를 위한 법사위 제1소위 개최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

- 법사위 제1소위 논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 ‘상고제도 개선 입법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
- 만일 4월 총선 이전에 법사위 제1소위가 열리게 될 경우에는 상고법원안이 안건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 있음. 안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총선 이후 ‘19대 국회 상고법원안 마지막 재논의’ 확답을 받을 수도 있고 법원의 상고제도 개선 입법 의지가 확고함을 인식시켜 줄 수 있음

■ 4월 총선 이후 대비

- 4월 총선 이후에는 19대 국회를 결산하고 평가하는 여론이 대두되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 상고법원안도 “추가 논의” 보다는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19대 국회가 상고제도 개선 입법을 미룬다면 최소 10년 이상 현행의 비정상적인 상고심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호소
- 아울러 19대 국회가 상고제도 개선 입법을 하는 것은 향후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사법제도의 틀을 만드는 획기적인 일로 19대 국회의 사법부 관련 가장 큰 업적이 될 수 있음을 강조

4. 맺음말 - ‘19대 국회 상고법원안 마지막 재논의’를 위하여

- 4월 총선 이전까지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관계법, 선거법 처리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 국면이 전개될 것이고 여야는 내부 현안 해결에 당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국면에서 상고법원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제1소위가 개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다만 20대 총선 이후에도 19대 국회 임기 만료일(5. 29.)까지 다수의 법안 의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총선 과정 또는 그 결과에 따

라 상고법원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미세한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19대 국회가 '상고제도 개선 입법'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여론 형성에 노력

(끝)



가정법원 관련 검토 등

2016. 4. 19.

사법지원실(○○○)

< 요 약 >

1. 문제점

- 심판기능 약화(비송 집중) → 법리를 경시하는 분위기
- 전문법관 위주 운영

2. 검토

- 전국 가정법원장 회의(연 2회)에 지원실장 또는 지원총괄심의관 참석
 - 현황 및 문제점 등 발표, 토론
- 외부행사 관련 윤리적 가이드라인 제시 (수석부장 통하여 전달)
 - 문제 소지 있는 행사는 추진 단계부터 행정처와 협의
- 가사소년 커뮤니티 정보 공유
 - 연구결과 시행경험 등 공유
 - 심의관·연구관 참여
- 가사재판실무 연수과정 강화
- 가사전문법관제도 개선 필요
 - 근무기간, 지방근무 면제 등 재검토

3. 기타(가정법원 발전위원회 구성 관련)

-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2004년),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2014)
 - 외부적 입법동력 등 활용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 법무부에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부적절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가정법원 발전위원회' 구성 추진 필요 (2018년)



I. 가사재판관련

1. 현 상황의 진단 등

- 가정법원의 법관들이 법률적 결론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고민 없이, 혹은 깊이 있는 법리적 고민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가 있음

<사례>

친권의 제한, 일시 정지 등의 제도가 2015. 10. 15. 도입되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법문상 명백하게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명백한바(민법 제924조 제1항, 제924조의2, 법원실무제요의 친권상실 부분도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음), 그런데도 이혼 및 친권지정 등 사건에서 위와 같은 친권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조항에 포함시켰고, 이로 인하여 집행 불능이 된 사례 등이 있음

- 특히 가사비송사건이나 가족관계비송사건의 경우에는 기존에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상반대는 결론 등을 내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사례1>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으로 대법원은 「성년인 자의 성·본 변경은, ①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과 불이익 양자를 신중하게 비교·형량하여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②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는 등의 남용이 없으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는데, 실제 가정법원에서는 오로지 ② 요건만 심리하고 인용·청구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음. 이에 따라 ① 번 요건을 좀 더 신중히 심리하라는 대법원 2016. 1. 26자 2014으4 결정이 나왔음. 다만, 위와 같은 대법원 결정 이후에도 실무가 크게 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사례2>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결 결정인 2006. 6. 22.자 2004스 42 사건의 연구관 보고서<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

「설령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불허한다는 판시를 하더라도 호적비송사건의 구조상 각급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대법원의 취지에 반하여 호적정정을 허가하더라도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 경우 대법원은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음」

실제 위 연구관 보고서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와 다른 내용의 결정 등이 이뤄지고 이에 관한 불복절차 등이 없어서 확정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성별정정사건에서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는 결정이 다수 선고되었음

2. 문제의 원인 (↔ 심판기능에 관한 관심 저하)

- 대부분의 가정법원 소속 법관들이 당사자의 후견적 기능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전통적인 심판기능에 대하여 다소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
- 재판현장에서 전통적인 심판기능보다는 후견적 기능강화를 중시하는 모습이 눈에 띈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실제 법관의 관여도가 낮음]
-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매년 항소심에서 바라본 1심 재판 등을 계속해서 강의하는 등 관련 논의 등이 활성화 되어 있으나, 가사재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장의 강의 과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잘못된 실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
- 가사비송사건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이해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대법원 판례 등에 어긋나는 심판을 하더라도 항소심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임¹⁾

1) 또한 가사사건은 절대적으로 조정성립율이 높으므로,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한 판결율이 높지 아니함. 2014년도 기준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율이 75.9%이고, 조정회부 사건의 조정율이 46.5%에 달함



- 오히려 인용하여 주면 당사자들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가급적 인용 쪽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3. 문제의 해결 (↳ 심판기능 강화)

가. 해결의 실마리

- 후견적 기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에서 심판 기능 강화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꿀 필요가 있음

- 창의적으로 후견적인 행사를 추진하는 법관만큼이나 꾸준하게 기록을 보면서 정치한 이론 등을 연구하는 가정법원 소속 법관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나. 구체적인 업무 추진

1) 전국가정법원장 회의 활용

■ 전국가정법원장 회의

- 매년 2차례 전국가정법원장이 모여서 회의를 함 [2016년도 1차 회의는 2016. 5. 30. 예정되어 있음]
- 가정법원장이 모여서 각급 법원의 시범사업 등을 결과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있는바, 행정처에서는 회의 결과만 보고받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함

■ 전국가정법원장 회의 활용

- 법원행정처가 위 회의에 참석하여 가정법원의 주요 현안 등에 관하여 전국 가정법원장에게 보고하고 각급 법원장님 등으로부터 의견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함
-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이나 서울고등법원 등 항소재판부로부터 가사재판 관련 유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위 회의에서 전국 가정법원장에게 전달하여 각급 법원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함



2) 법관 연수과정 개편

▣ 2016년도 법관연수 과정은 3일간으로서 별지와 같음

- 현재 법관 연수과정은 「가정법원 심판 기능 관련 분야」와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관련 분야」의 비율이 약 1: 1임

▣ 2017년도 가사재판실무 법관연수 과정을 개편하여 3일간에서 4일간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심판기능 강화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배려하도록 함 [2016년도 강좌에 대하여 강의시간 연장 등을 건의하는 법관들이 다수 있었음]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 실무를 2개의 강의로 나누어서 각 1시간 30분씩 강의하도록 함
- 후견사건 실무, 가사비송실무의 강의시간 등을 기존의 1시간에서 1시간 30분씩으로 연장함
- 합의부 전속관할 사건인 상속재산분할 실무와 항소심에서 바라본 1심 재판 등의 강좌를 신규로 개설함

3) 가정법원 내 연구회 연구결과물의 상시적인 커뮤니티 게시 추진

▣ 가정법원 내 연구회 운영 현황과 가사소년커뮤니티

-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는 가사재판연구회 등이 있어서 가사재판 등과 관련한 이론적인 연구를 계속하면서 연구 결과물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그 결과물 등이 전국적으로 공유되고 있지 않음
- 가사소년커뮤니티가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는 있으나 대부분 후견적 기능강화와 관련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형편임

▣ 가정법원 스스로 연구결과물 등을 가사소년커뮤니티에 게시하도록 조치함



- 각 가정법원의 기획법관이나 서울고등법원 기획법관 등을 통하여 각급 법원에서 논의된 가사재판과 관련된 이론적인 연구결과물이 즉각적으로 가사소년커뮤니티에 게시되고 전국적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조치함
-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에 가사재판 등을 담당하는 연구관을 가 입시켜서 이론적인 깊이도 추구하도록 함

II. 소년보호재판의 외부기관 연계 관련

1. 현상황의 진단

▣ 법원행정처 등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외부기관과의 연계 행사가 발생함

-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는 각급 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의 활성화, 소통사업의 일환 등으로 청소년단체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외부 연계 사업을 진행함

[사례 1, 대전가정법원의 로드스쿨]

보호소년들과 법원직원, 법관, 청소년단체 회원들이 1:1 멘토를 결성하고 지리산을 9박 10일간 걷는 행사임

대전가정법원, 청소년단체, 공익재단 등이 함께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함. 2014년도 국정 감사장에서 매우 칭찬을 받았고, 2015년도에는 조선일보 등에서 매우 크게 보도되기도 하였음

[사례 2, 서울가정법원의 국립발레단 등과의 업무 제휴]

국립발레단과 업무 제휴를 맺어서 국립발레단 리허설 공연 등에 보호소년들이 무료로 관람가능하게 하거나, 국립발레단에서 6호 기관인 마자렐로 센터에 일정 시간 강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

-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행정처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있음.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요청을 하면서 행사내용을 통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뿐임



- 현재까지 언론기사는 가정법원에 매우 호의적이나 윤리적으로 우려스러운 기사도 게시되고 있는 형편임

[사례]

부산가정법원 소속 정○○ 판사가 보호소년과 함께 8박 9일간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함께 떠나는 2인 3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박○○ 부산가정법원 조정위원회장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가 후원하였다는 기사 등이 나옴(매일경제 4. 11. 자 기사)으로써 마치 위 회사의 홍보에 이용된 것과 같은 현상을 일으킴

2. 문제의 원인

- 예산부족 [2016년도 상반기 소년보호재판 활성화 관련 예산 배정 내역]

법원	소년보호재판 활성화
서울가정	19,950,000원
의정부지법	6,350,000원
인천지법	9,130,000원
수원지법	19,360,000원
춘천지법	4,110,000원
대전가정	11,550,000원
청주지법	4,450,000원
대구가정	11,080,000원
부산가정	6,970,000원
울산지법	3,760,000원
창원지법	4,280,000원
광주가정	8,390,000원
전주지법	3,560,000원
제주지법	3,440,000원
합계	116,380,000

- 그런데, 위 금액만으로는 각급 법원에서 원하는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금액이 너무도 부족한 형편임 [더욱이 2015년도에 비하여 2016년도에는 그 예산액이 약 35% 삭감되었음]
- 반면에 지역사회 등에서는 소년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많은 단체들



이 있으며, 기부 등을 하고 싶어 하는 공익재단도 상당수가 존재함

■ 윤리적 가이드라인 부재

- 기존의 윤리적 쟁점은 전통적인 재판영역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었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과 관련하여 특화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음
- 법원이 지역사회 자원 활용차원에서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소년보호재판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것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또한 일선법관들의 창의성을 충분히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Positive 방식보다는 Negative 방식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법관들이 더욱 안심하고 활발하게 외부기관과 연계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행정처에 사전에 보고하는 시스템의 부재

- 현재 각급 가정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 관련 주요 행사 등을 기획법관 등을 통하여 다른 소통 관련행사등과 함께 행정처에 사후적으로 보고하고 있음[⇒ 기획조정실에서 취합]
- 다만, 법원행정처에서 홍보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사용할 만한 행사이거나 윤리적으로 검토 받아야 할 행사 등에 관하여 사전에 행정처에 별도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

3. 문제의 해결

1) 전국 가정법원장 회의 활용

- 대부분의 소년보호재판 관련 행사는 하반기에 있게 되므로, 상반기에 열리는 전국 가정법원장 회의에서 하반기 소년보호재판 관련 중요 행사[대언론 등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사항,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서로 소개하도록 하고 관련 문제점 등을 토의



하게 함

- 각급 법원의 바람직한 외부기관 연계제도 등은 전국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예산지원을 함

2) 윤리적 가이드라인 제시 (↳ 윤감실과의 협업)

■ **현재 외부기관 연계와 관련된 법관 사회에 알려진 윤리적 안내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윤감실과 협업하여 외부기관 연계와 관련된 윤리적 안내사항을 제시함**

- 다만, 윤리적 안내사항의 형식 등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와 정책 결정이 필요함
 - 법관 개인에 대한 윤리가 아니라 법원의 사업 추진이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의심 우려 부분에 대한 안내사항임

■ **이를 통하여 윤리적 안내사항에 위반되는 외부기관 연계행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내사항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나는 경우에는 행정처와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함**

3)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업무기획단계에서 행정처와 협의하는 시스템 신설

■ **단기적 업무 추진방안**

-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추상적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윤리적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윤리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외부기관 연계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사전에 사법지원실 및 윤리감사관실과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언론보도 등이 크게 예상되는 주요한 외부기관 연계 행사 등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사전에 사법지원실 및 공보관실과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장기적 업무 추진방안 (⇨ 홍보실 확대 개편을 통한 각급 법원의 홍보지원)

- 소년보호재판의 외부기관 연계 행사 등은 법원의 가장 효율적인 홍보수단 중에 하나임. 따라서 이를 행정처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여 줄 체계적인 조직이 별도로 필요함
- 현재 행정처 내에서 홍보조직 개편 관련 TFT가 논의 중에 있는바, 홍보조직이 확대 개편될 경우에 각급 법원에서 주요한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는 소년보호재판, 소통행사 등과 관련된 전체적인 방향설정업무와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Ⅲ. 전문법관 제도 개편의 필요성

1. 전문법관 제도의 현황

▣ 시행시기 : 2005년 정기인사 시 최초 실시 이후 매년 실시

▣ 근무기간 등

■ 근무기간

○ 서울가정법원 : 부장판사 5년, 배석·단독판사 6년

-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법관의 경우 기존 근무기간을 산입하지 않음. 다만, **합산 근무기간이 7년**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 가능
- 배석·단독판사로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이 되어 근무하던 중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다시 5년 동안 서울가정법원에서 근무하되, 합산 근무기간이 7년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가능

○ 그 외 가정법원 : 부장판사 4년, 배석·단독판사 4년

- 현재 가정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법관의 경우 기존 근무기간을 산입하지 않음. 다만, **합산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 가능
- 배석·단독판사로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이 되어 근무하던 중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다시 4년 동안 해당 법원에서 근무하되, 합산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 가능 등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가정법원별 전문법관의 비율 (2015년도 기준)

	서울가정	부산가정	대구가정	대전가정	광주가정	인천가정
전문법관	17명	5명	2명	1명	2명	2명
전체법관	41명	13명	10명	6명	7명	10명
비율	41%	38%	20%	16.6%	28.5%	20%

2. 서울가정법원 전문법관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

1) 긍정적 시각을 중심으로

▣ 외부의 시선

- 가사담당 변호사 등의 평가를 통하여 보았을 때, 전문법관이 그렇지 아니한 법관에 비하여 좀 더 당사자에게 애정을 보이는 등 좀 더 바람직한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음
- 가정법원 전문성의 상징으로서 전문법관 제도는 외부에 대한 설득 논리를 펴기에 매우 유용함

▣ 긍정적 소신

- 일방적인 인사명령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 선발된 상태에서 장기간 가정법원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사명감이나 근무의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새로운 제도마련이나 개선책 등에 관하여 비교적 유연하게 접근하면서 창의적으로 업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전문조사관과의 관계 등

- 오랜 기간 같이 근무함에 따라 서로를 잘 이해함. 이에 따라 전문법관들이 전문조사관을 잘 활용하여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평가가 많음



2) 비판적 시각을 중심으로

▣ 법원장님 또는 수석부장과와의 관계 등

- 법원장님이나 수석부장이 사법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 순응하지 아니하고 잘 모르는 분이 비정상적인 지시를 한다는 식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법원장, 수석부장 등과의 관계 등 공식적인 지휘계통보다는 전문법관들 상호간에 뭉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많음
 - 이에 따라 황○○ 가정법원장님 시절에는 ‘전문법관이 가정법원 주인처럼 행사한다’ 는 핀잔을 받기도 하였음
-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가사팀, 조기조정팀, 소년보호팀, 후견팀, 비송팀 등 여러 개의 팀 형식으로 재판부가 나뉘어져 있음. 각 팀이 행사 등을 기획할 때 법원장님에게 직접 보고 드리는 방식으로 수석부장을 배제하는 경우가 존재함 [다만, 이는 각급 법원에서도 정도의 차이지만 일부 나타나는 현상임]

▣ 업무태도 등

- 좋은 평정 등을 받는 것에 관심이 없음. 일부 법관들의 경우에는 근무태만이 눈에 보임
- 부장판사 등의 경우에는 외부위원, 행정처 TF팀장 자리 등에 드러내놓고 욕심을 보이는 경우가 다수 있음 [다만, 이는 일부 부장판사의 성향이 드러난 것일 수 있음]
- 판결문을 쓰지 않는 재판보직이 많고 행정적인 업무에 있어서 전문조사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말’로만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강함
- 또한 비송사건이나 보호사건과 같이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고 항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인 태도 등을 넘나드는 행동 등이 들어남 [다만, 이는 전문법관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음]

▣ 장기간 근무로 인한 문제점 등

- 본인들이 전문가라는 자존심 등을 내세워 실무제요나 재판실무편람 등의 내용도 보지 않아서 재판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음
- 더욱이 전문법관의 경우 가정법원의 전문성 등을 담당해야 함에도 대부분 가사소송사건만 다루다가 1년 또는 2년만 가사비송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의 재판을 담당하여 전문성을 키운다고 볼 수 없음

3. 의견 (전문법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재검토 필요)

▣ 전문법관 제도 도입 당시와는 현재의 상황이 다름

- 2005년도 가정법원 전문법관 도입 당시에는 지방권 근무가 현재와 달리 대략 1년간으로 단기간이었는바, 지방권 및 수도권 근무가 약 5년간으로 장기화된 현재 시점에도 지방권 근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 더욱이 서울가정법원 아닌 다른 가정법원의 경우에는 권역외 이동을 유보함에 그치고 있음
- 과거와 달리 가정법원 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지기도 하였음

▣ 전문법관 근무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정한 것은 다소 과다함

- 비록 전문성을 꾀한다고 하더라도 한 법원에서 5년에서 7년간 근무하게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법원의 실정에 다소 안 맞는 면이 있음
- 5년을 넘는 장기간 근무가 법관의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지 혹은 나태함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유인은 아닌지에 관하여 종합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로 5년간 근무하게 하는 것은 법원장 중심의 사법행정권 운용에 방해가 되는 측면도 있음

- 조사관이나 법원직원들이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는 전문법관에게 충성하는 경향을 보임

- ▣ 인사실에서 전문법관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IV. 가칭 “가정법원 발전위원회” 구성 관련

1. 과거의 유사사례

1) 2004년도 가정법원 발전위원회

- ▣ 전체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한명숙 국회의원
- 외부위원 : 강○○ 변호사, 조배숙 국회의원, 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손○○ 과장(여성부), 이○○ 과장(보건복지부), 조○○(KBS 제작부장) 등 외부인사 30명
- 내부위원 : 안○○ 부장판사 등 내부인사 10명

- ▣ 분과 구성 등

- 제1분과 (위원장 : 박○○ 변호사, 위원 12명)
 - 재산분할제도 개선방안, 비송사건에서의 소송구조제도 도입, 사전처분·이행명령의 실질적 이행확보 방안 등 가사사건 절차 정비 논의
- 제2분과 (위원장 : 김○○ 명지대학교 법학장, 위원 12명)
 - 협의이혼제도 개선 및 상담에 관한 논의(숙려기간 도입 등), 가정법원의 이혼사건 관련 복지서비스 방안 논의



- 제3분과 (위원장 : 강○○ 변호사, 위원 16명)

- 소년제도 관련 개선, 가정보호 제도 개선 등

▣ 활동기간 등

- 2004. 7.부터 2005. 7.까지 약 1년간 활동하였음
- 전체위원회는 5차례, 분과위원회 회의는 19차례, 공청회 2차례, 간담회는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대전으로 나눠서 진행하였는바 도합 8차례 실시하였음

▣ 활동성과 등

- 가사·소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대법원 건의문, 여성가족부 건의문, 법무부 건의문 등을 채택하였음
- 건의사항 중에서 독립청사의 건립, 법관의 전문화, 조사관의 대폭적인 증원 등의 사항은 많이 이뤄졌음
- 다만, 법률안 중에서 당시에 통과된 것은 많지 아니하고 여기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한 후에 입법된 내용이 다수 있음
- 사전처분·이행명령 절차에서의 실질화, 협의이혼에서의 숙려기간 도입, 소년보호재판에서 국선보조인 제도 도입 등

2) 2013년도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윤○○ 서울대학교 교수
- 위원 : 김○○ 여성변호사협회장 외 외부인 4명, 내부인사 3명

▣ 활동기간 등

-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2년간 활동하였음
- 위원회 회의는 27차례였으며, 전문위원 회의는 15차례 열었음



▣ 활동성과 등

- 2015. 2.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법무부에 입법의회한 상태임

2. 현시점에서 가칭 가정법원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여부

1) 가정법원 발전위원회 구성의 목적 (→ 대외적 입법동력 등 활용)

▣ 가정법원 내부 개선논의는 전국 가정법원장 회의 이용

- 가정법원 내부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가정법원의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장 회의에서 논의하여야 함. 외부인사가 가정법원의 내부적인 문제점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은 가정법원에 대한 신뢰저하를 넘어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옴
- 더욱이 가정법원이라는 전문법원을 구성하였고 이러한 가정법원장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별도로 행정처에서 ‘가정법원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행정처가 가정법원을 믿지 못한다는 인상을 표시함 ⇨ **가정법원 판사들의 반감을 살 수 있음**
- **회생·파산위원회 등의 경우에는 전문법원이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 등 외부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현재 가정법원 발전위원회 구성 상황과는 많이 다름**

▣ 가정법원 발전위원회는 대외적 목적으로 활용

- 2015년도에 구성되어 운영된 사실심충실화 위원회(사법지원실 소관)나 아이피허브코트추진위원회(기획조정실) 모두 대외적인 메시지 등을 주기 위하여 구성·운영된 위원회임
- 이에 따라 사실심 충실화 법안 등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쌓아서 법률안을 통과시켰고(사실심충실화 위원회), 특허법원 관련 많은 예산(아이피허브코트 추진위원회) 등을 확보할 수 있었음



2) 구성시기 등 검토

- **법무부에서 대법원이 입법의회한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위원회를 꾸려서 논의하고 있는 중임**
 - 이와 같은 형편에서 대외적 입법활동 등을 목적으로 가정법원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반감을 가지고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개연성이 있음
-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에 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
 - 현재 법무부에서는 2016. 12.경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음.
 - 그 후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지켜본 후에 논의하는 것이 위원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타당함

3. 검토의견

-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지 불과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정법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입법 의뢰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가정법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별지]

시간 \ 일자	1일차(3/28, 월)	2일차(3/29일, 화)	3일차(3/30일, 수)
오전	등록 및 친교 09:30-09:50 연수일정 안내 09:50-10:00		
	이혼사건 소송실무 10:00-11:50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	후견사건 실무 10:00-10:50 서울가정법원 김○○ 판사 양육비 관련 제문제 11:00-11:50 배○○ 부장판사	가사단독재판 및 가사신청의 제문제 10:00-11:50 서울가정법원 김○○ 판사
중식			
오후	부부치료의 이론과 실제: 부부 무엇으로 사는가? 14:00-15:30 연리지 가족부부연구소 소장 박○○	가사상담과 조정 14:00 - 15:10 고양지원 장○○ 판사	가사재판과 조력자들 14:00-15:10 서울가정법원 신○○ 판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 실무 15:50-17:20 서울가정법원 이○○ 부장판사	가사비송실무(후견제외) 15:30-16:20 서울가정법원 이○○ 판사	각급법원의 후견·복지적 가사재판 운영의 실제 15:30-17:00 인천지방법원 전○○ 고양지원 이○○ 부산가정법원 박○○ 판사
		가사조사 및 조정조치의 실제 16:40-17:50 서울가정법원 안○○ 조사관	
만찬		법원행정처 차장님 주재 만찬	

제20대 국회의원 분석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8. 7. 31.

법원 행정 처



제20대 국회의원 분석

2018. 7. 31.

기획조정실

【정당별 의석수 분포(2016. 7. 26. 기준)】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합계
129	121	38	6	6	300

이하 내용은 정당별 국회의원(무소속 포함)에 관하여, 가까운 법조인, 주요 이력, 평판, 사법부에 대한 인식 등을 정리한 것으로 (약 60페이지 분량 / 기재 내용 없는 의원도 적지 않음)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보호되어야 할 개인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 등의 저촉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기획총괄심의관 신규 보임 필요성 검토

2017. 1. 18.

기획조생실

1. 검토배경

■ 2016. 2. 정기인사에서 기획총괄심의관 미보임

- 법원행정처 조직의 효율화, 슬림화를 위한 심의관 감원 정책의 일환
 - 기획총괄심의관이 공석이 되고, 대신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이 신설됨
- 기획총괄심의관 보직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님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항 별표 1의1)에 기획총괄심의관 보직은 그대로 두었음

■ 급격한 대내외적 변화 ⇨ 기획총괄심의관 신규 보임 필요성 급증

- **[시기적] CJ 전환기** ⇨ 6년 주기로 돌아오는 사법행정 수요 급증의 시기
 - ① 현 대법원장님의 업적을 정리하고, ② 신임 대법원장님의 향후 6년간의 마스터 플랜을 구상·계획·집행하는 업무 ⇨ 개별 실국의 업무도 증가하지만, 행정처 전체의 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취합·조정하는 업무가 크게 증가
 - 신임 대법원장님 취임 초기 사법행정의 안정적 정착과 사법 운영 動力의 조기 확보를 위해 사법행정 담당 인력 확충이 평상시보다 더 절실한 상황
 - 급증하는 사법행정 수요에 대응하려면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증원이 필요하지만, 특히 **대법원장님 교체**라는 **대전환기에 요구되는 업무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면 **‘각 실국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조정’**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기획총괄심의관의 신규 보임 필요성이 더욱 대두됨
 - 現 국장, 총괄심의관의 경우 기존 업무만으로도 한계치에 달하여 TF 팀장 등 각 실국 사이에 연계된 업무를 담당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

● **[외부적] 미증유의 정치적 격변** ⇨ 예상치 못한 사법행정 수요 급증

- ① 탄핵 및 조기 대선 가능성 등 불확실한 정치 상황, ② 본격적인 개헌 정국 도래, ③ 검찰 개혁을 비롯한 각종 사법개혁 논의 급증, ④ 연이어 계속될 대법원장/대법관/헌재재판관 청문회 ⇨ 사법행정의 허리를 담당할 “총괄심의관”의 역할 긴요

● **[내부적] 기존의 법관 사회가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관 사회로 이행해가는 過渡期** ⇨ 과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법관 사회의 인사 관행, 조직문화 등을 근본적으로 점검하는 업무 증가

-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법관 익명 카페 등을 통해 법관인사패턴, 사무분담, 조직문화 등에 대한 불만이 계속 분출되고 있는 현실 ⇨ 조기 대선으로 인한 새 정부 출범과 CJ 전환기가 밀접하게 중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관 사회 내부의 여론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부장급 심의관’에 대한 필요성 증가
- 사법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 확대 ⇨ 사법행정위원회 등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확대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법관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 ⇨ 위원회 등 운영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증가

■ **기획총괄심의관 신규 보임 여부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분석 필요**

- 아래와 같은 검토를 통하여 기획총괄심의관 신규 보임의 장·단점을 냉철하게 分析 ⇨ 신규 보임 여부 및 신규 보임 시 수행할 역할 확정
 - ① 기획총괄심의관이 과거부터 수행해 온 업무에 대한 연혁적 분석
 - ② 2016. 2. 정기인사에서 기획총괄심의관을 보임하지 않은 이유
 - ③ 2017. 2. 정기인사에서 기획총괄심의관을 보임해야 할 필요성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

2. 기획총괄심의관 수행 업무에 대한 연혁적 분석

<역대 기획총괄심의관 명단>

이름	직명	기수	재임 기간
김○○	기획조정심의관	15기	2004. 2. - 2005. 2.
한○	기획조정심의관	17기	2005. 2. - 2005. 10.
임○○	기획조정심의관	16기	2005. 10. - 2005. 12.
이○○	기획조정심의관	16기	2006. 1. - 2007. 2.
이○○	기획조정심의관	17기	2007. 2. - 2009. 2.
심○○	기획총괄심의관	20기	2009. 2. - 2011. 2.
이○○	기획총괄심의관	22기	2011. 2. - 2012. 2.
박○○	기획총괄심의관	22기	2012. 2. - 2014. 2.
이○○	기획총괄심의관	25기	2014. 2. - 2016. 2.

■ ① 2005. 12. 以前 ⇨ “기획조정심의관”

- 기획조정실은 “실장(고법부장) ⇨ 담당관(고법판사)” 체제로 구성
 -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1]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에는 기획조정심의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규칙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지법부장’을 보임
 -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한편, 기획조정실 내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하는 역할 수행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2005. 7. 6. 개정)◆

제2조(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인사실장, 행정관리실장과 송무국 및 법정국의 국장 밑에 **심의관**을, 사법시설국의 국장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각 둘 수 있다. 심의관과 담당관은 **소속 실·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실·국내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 ② 2005. 12. 행정처 조직 개편 以後 ⇨ “기획조정심의관 + 시설업무”

- 사법시설국(舊 건설국)을 해체하여 업무연관성에 따라 기능을 이관하면서 기획조정심의관의 업무에 “사법시설의 설치,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계획의 총괄 및 조정”이 추가됨
- 전국 법원의 사법 시설 규모 및 노후 상태에 대한 점검, 연차적 시설확충의 필요성 예측, 중장기 시설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시설기획 업무의 총괄
-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1]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에 기획조정심의관 분장사무가 최초로 명시됨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2005. 12. 29. 개정)◆

제2조(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 제1항 별표[1-1]

심의관	분 장 사 무
기획조정	1.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여 기획조정실 내 업무 총괄 2. 사법시설의 설치,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계획의 총괄 및 조정 3. 여러 실·국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조정

- 2005. 12. 행정처 조직 개편 당시 작성된 보고서는 기획조정심의관의 업무를 아래와 같이 예정하였음

☑ “법원행정처 개편방안”(2005. 12.)

기획조정심의관은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여 기획조정실 내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이외에 “사법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계획의 총괄, 조정 업무”를 고유 업무로 수행하도록 함

- ▶ 전국 법원의 사법시설(법원청사, 법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 검토할 필요 있음
- ▶ 법관 및 직원의 인력충원 상황, 재판부 인력구조 변동 등도 반영한 장기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 있음
- ▶ 기획조정실 소속 타 담당관들의 업무에 대한 직접 관여나 결재 체제의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③ 2009. 1. 행정처 조직 개편 이후 ⇨ “기획총괄심의관” 명칭 도입

- 기획조정심의관 중 지법부장이 보임되던 자리의 직명을 “기획총괄심의관”으로 변경 ⇨ 총괄심의관의 역할 정립
- 당시 조직 개편의 주된 목표가 “부장 심의관 축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의 경우 “부장 심의관”을 존치시키고 명칭도 “기획조정심의관” ⇨ “기획총괄심의관”으로 변경한 것이 특징임
- 조직 개편 당시 의도한 기획총괄심의관의 역할(부장 심의관 존치 이유)
 - [① 업무 과중한 기획조정실장 보좌] 주로 시설담당관, 기술담당관 업무 분야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 보좌
 - [② TF 운영] 행정처 실·국간 합동작업이 필요한 문제에 관하여 TF 팀장 등으로 활동 ⇨ TF 팀장을 기획총괄심의관의 핵심 업무로 상정
- 다만, “시설담당관”을 신설(중전 시설기획팀을 정식 담당관 체제로 개편) 하면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1]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에 기재된 기획총괄심의관 분장사무 중에서 “사법시설의 설치,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계획의 총괄 및 조정” 부분을 삭제함
 - 위와 같이 개정된 내용이 현재까지 변경 없이 계속되고 있음

◆舊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2009. 1. 9. 개정)◆

제2조(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 제1항 별표[1-1]

심의관	분 장 사 무
기획총괄	1.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 보좌 2. 여러 실·국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조정 등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업무



3. 기획총괄심의관 신규 보임 필요성

가. 부정설

■ ① **심의관 감원**이라는 정책 기조에 역행

- 법원행정처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 부장 심의관 1명을 감원한 것을 1년 만에 되돌리는 것은 심의관 감원이라는 정책 기조에 역행

■ ② **옥상옥(屋上屋)** ⇨ **의사결정 지연**으로 결재 라인 효율화에 역행

- 부장급 심의관을 증원하는 경우 중간 결재라인이 추가됨으로써 행정처 의사결정의 신속성 도모 및 효율화 정책에 역행

- 중간 결재 단계가 추가되면 신중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함
- 그러나 기획총괄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권한을 대폭 위임받지 않는 이상 최종 결정은 어차피 기획조정실장이 할 수밖에 없음 ⇨ 신속한 의사결정만 지연되는 결과

- **심의관들의 업무부담 증가, 책임감, 사기 저하** 문제 발생 가능

- 기획총괄심의관은 기획조정실장의 업무 지시가 없더라도 기획조정심의관에게 독자적으로 과제 부과 가능 ⇨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과제를 부과할 수도 있고, 그 경우 기획총괄심의관을 보좌하는 기획조정심의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존재

◆**現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 제3항 별표[1-1]

심의관	분장사무
기획총괄	1.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 보좌 2. 여러 실·국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조정 등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업무
기획조정	1.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총괄심의관 보좌 2. 사법행정과 재판과정에서의 소통정책의 기획 및 집행 3. 복지정책의 총괄 기획 및 집행 4.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총괄심의관이 지정한 업무

- 2011년 개편 당시 사법정책실을 사법지원실과 사법정책실로 분리할 때도 정책총괄심의관 배치 여부를 두고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기되었음

☑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 검토 보고”(2011. 10.)

- ▶ 심의관은 대부분의 업무에 관하여 총괄심의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이후에 정책실장에게 결재를 올리는 과정을 거침
- ▶ 그 과정에서 담당심의관은 **총괄심의관과 사법정책실장에게 모두 보고·지시를 받게 되어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총괄심의관과의 협의가 길어져서 업무지연을 초래하거나, 협의내용에 대하여 사법정책실장으로부터 재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업무가중을 호소하고 있음**
- ▶ 현실적으로는 정책실장과 총괄심의관이 중복적으로 스크린한다는 장점보다는 **보고서 파악에 중복적인 노력이 투입되고 그에 따른 지시·감독업무도 중복되는 측면이 노정됨**
- ▶ 심의관은 정책실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이중의 보고**를 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고, **총괄심의관과 협의되어 정리된 사항을 다시 재검토하는 등의 애로점도** 느낄 수 있음
- ▶ 심의관은 **사무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느낌이 강하여 창의적이고 역동적·적극적인 근무의욕을 촉발시키지 못하고 있음**

☐ ③ 기획총괄심의관에게 **Paper Work** 기대 곤란

- 행정처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으려면 부장급 심의관보다는 고법 판사급 심의관 증원이 더 절실

나. 긍정설

☐ ① **CJ 전환기 및 불확실한 정치적 격변기**라는 특수 상황 ⇨ 각 실국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 조정 필요성 급증 ⇨ **각종 TF나 실무 지원팀을 이끌 수 있는 기획총괄심의관 신규 보임** 긴요

- 6년 주기로 돌아오는 CJ 전환기 및 불확실한 정치적 격변기를 맞이하여 행정처 전체의 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취합·조정하는 업무가 크게 증가
- 기획제1심의관이 행정처 전체의 집행 계획 구상, 자료 취합·정리 등 실무 업무를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동료 심의관들에게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하기는 어려운 구조

- 각종 TF나 실무지원팀 팀장을 맡을 기획총괄심의관 보임이 긴급함
- [2] **대외 활동의 수요 증가** ⇨ **대외 활동에 관한 기획조정실장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 줄 필요**
- **본격적인 개헌 정국 도래**
 - 문재인 전 대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자고 공약한 상황 ⇨ 올해 대선 前 개헌이 무산되더라도 대선 後에는 본격적인 개헌 정국이 도래할 것임
 - 본격적인 개헌 정국에서는 심의관들의 페이퍼 워크 못지않게 실장, 국장, 총괄심의관의 대외 업무도 매우 중요함
- **2017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사법개혁 논의 대두 가능성**
 - 탄핵 및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검찰 개혁을 비롯한 각종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부 주도의 사법개혁이 진행되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제18대 국회에서 사개특위가 구성된 바 있음
 - 외부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 시, 기획조정실 중심의 대응 불가피 ⇨ 기획조정실의 대외 업무부담 가중
 - 2010년~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가동 시 기획조정실의 대 국회 업무 부담이 매우 가중됨
- [3] **2017~2018년 각종 위원회 출범 일정 집중** ⇨ **실무지원팀장 맡을 총괄심의관 필요**
- 미래사법자문위원회, 헌법자문위원회,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사법정보화자문위원회 및 사법국제화자문위원회 등 법원행정처장 자문위원회
- 사법정보화 전략위원회 등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실행위원회



-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2016년 출범), 법관윤리심의위원회(2017년 출범 예정), 사법정책기획위원회(미정) 등 사법행정위원회 등

▣ 4) 2017~2018년 **청문회 일정 집중** ⇨ **준비팀장** 말을 **총괄심의관** 필요

- 2017~2018년 2년의 기간 동안 대법원장 청문회 1회, 대법관 청문회 8회,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청문회 7회 등 다수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음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퇴임 일자>

대법원	퇴임일	헌법재판소	퇴임일
이○○ 대법관	2017. 2. 27.	박○○ 소장	2017. 1. 31.
박○○ 대법관	2017. 6. 1.	이○○ 재판관	2017. 3. 13.
양승태 대법원장	2017. 9. 24.	이○○ 재판관	2018. 9. 19.
김○○ 대법관	2018. 1. 1.	김○○ 재판관	2018. 9. 19.
박○○ 대법관	2018. 1. 1.	김○○ 재판관	2018. 9. 19.
고○○ 대법관	2018. 8. 1.	강○○ 재판관	2018. 9. 19.
김○○ 대법관	2018. 8. 1.	안○○ 재판관	2018. 9. 19.
김○ 대법관	2018. 8. 1.	조○○ 재판관	2019. 4. 18.
김○○ 대법관	2018. 11. 1.	서○○ 재판관	2019. 4. 18.

▣ 5) **시설·기술** 관련 **기조실장** 및 **기획조정심의관의 업무 부담 경감** 가능

- 기획총괄심의관은 종래 시설담당관, 기술담당관 업무 분야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 기획총괄심의관의 부재로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조정심의관의 시설·기술 관련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음
⇨ 기획총괄심의관이 신규 보임될 경우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조정심의관의 업무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시설·기술 업무 분야의 경우, 기획총괄심의관은 일반적인 시설담당관, 기술담당관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므로 심의관(법관)의 중간결재권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통상의 총괄심의관(예: 現 지원총괄심의관)과는 구별됨
⇨ 심의관(법관)과의 관계에서 중간결재권자로서 의사결정을 지연시킨다는 문제점은 없고, 오히려 고법판사급인 기획조정심의관의 업무 부담 감소에 기여함



- 아울러 시설·기획 분야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기획조정실장의 대외 업무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예: 기획조정실장이 만나기에는 급이 낮으나, 심의관이 만나기에는 나이, 직급 때문에 부담스러운 기획재정부 간부를 상대로 한 대외 업무)

다. 검토의견 ⇨ 기획총괄심의관 신규 보임 필요

문제점	보완 방안
① 심의관 감원 기조 역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적 보직이 아닌 특수 상황에서의 급박한 행정 수요에 대응한 한시적·임시적 보직으로 기획총괄심의관 편제를 탄력적으로 운영
② 의사결정 지연 심의관 업무부담 증가 책임감 및 사기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총괄심의관을 기획조정실의 통상적 결재 라인 외부에 위치한 별도 보직으로 운영하고, 중간결재를 최소화함으로써 극복 가능
③ Paper Work 기대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2018년의 특수 상황에서는 TF 팀장 및 대외 활동 수요가 더 많음 ■ Paper Work에 능한 적임자 발탁으로 해결 가능

■ ① [심의관 감원 기조 역행] ⇨ 상시적 보직이 아닌 **CJ 전환기 및 불확실한 정치적 격변기**라는 특수 상황에서의 **급박한 행정수요**에 대응한 **한시적·임시적 보직**으로 기획총괄심의관 편제를 **탄력적**으로 운영

- 사법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CJ 전환기 및 불확실한 정치적 격변기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함 ⇨ 평상시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특수 상황에서는 행정처 조직을 彈力的으로 운영할 필요
- 전체적으로는 행정처 슬림화, 심의관 감원 기조를 유지하되, 기획총괄심의관 편제를 유지하면서 상황과 인력 운영 형편을 감안하여 기획총괄심의관을 신규 보임하거나 공식으로 운영하는 彈力的 자세 필요

- ② [의사결정 지연, 심의관 업무부담 증가, 책임감, 사기 저하] ⇨ 기획총괄심의관을 **기획조정실의 통상적 결재 라인 외부에 위치한 별도 보직**으로 운영하고, **중간결재를 최소화함으로써 극복 가능**
 - 기획총괄심의관 ⇨ 기획조정실의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여 중요한 사법행정과제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결재 라인 外部에 위치한 보직으로 위치 설정
 - 기획총괄심의관은 기획조정실 심의관(법관)들에 대한 중간결재권자가 아닌 것으로 위치 설정할 경우 중간결재로 인한 문제점 극복 가능
 - 기획총괄심의관은 ① 행정처 전체의 관점에서 특히 집중할 필요가 있는 주요 정책이나 ②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정책의 집행 또는 ③ TF 팀장(실국별로 연계된 업무의 조정)이라는 역할 수행
- ③ [Paper Work 기대 곤란] ⇨ **2017~2018년의 특수 상황에서는 TF 팀장 및 대외 활동 수요가 더 많고, Paper Work에 능한 책임자 발탁으로 해결 가능**
 - Paper Work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시기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각종 TF 팀장, 청문회 준비팀장, 각종 위원회 실무지원팀장 또는 대외 활동 업무를 맡을 사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은 상황
 - 업무 추진력이 강하고, 네트워킹에 능한 사람을 기획총괄심의관에게 보임할 경우 행정처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임
 - 기획총괄심의관은 기획조정실 결재 라인 외부에 위치한 독자적 보직 ⇨ 일정 정도의 Paper Work는 불가피하므로 Paper Work에 능한 책임자 발탁으로 문제 해결 가능

4. 신규 보임될 기획총괄심의관의 역할과 담당 업무

가. [총론] 위상과 역할

▣ 기획총괄심의관의 주된 임무 ⇨ '행정처 전체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것

● '행정처 전체 업무' ⇨ 기획총괄심의관은 '기획조정실 内部 업무'가 아닌 '기획조정실 外部 업무', 즉 '행정처 전체 업무'를 주된 활동 영역으로 삼아야 함

● '기획조정실장 보좌' ⇨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행정처 주요 정책의 집행을 주된 임무로 함(주요 과제에 관한 TF 팀장 등)

- 지시받은 업무만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의 입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발굴'한 後 '기획조정실장의 결재'를 받아 수행하는 자세 필요

▣ 급박한 사법 행정 수요에 대응한 한시적·임시적 보직

● ① 행정 수요가 평상시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② 책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획총괄심의관 편제는 유지하되 보임은 하지 않고 공석으로 유지

☑ 기획총괄심의관의 책임자

▶ [각종 TF 팀장] TF의 초기 방향을 잘못 잡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림 ⇨ 행정처 업무에 정통한 사람이 책임자임

▶ [행정처 전체 업무 관장] 다른 부장급 심의관과 충돌하지 않는 원만한 성품

▶ [대외 업무 담당] 업무 추진력이 강하고, 네트워킹에 능하여 함

▶ [별도의 독립 보직] 심의관 도움 없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 보유 필요

▣ 기획조정실의 통상적 결재 라인 외부에 위치한 별도의 독립된 보직

● [원칙] 기획조정실 심의관(법관)의 경우 통상 업무는 기획총괄심의관을 거쳐지 않고 기획조정실장에게 바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

- 기획조정심의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



항 별표[1-1]의 기획조정심의관의 분장 사무 중 “**기획총괄심의관 보좌**”, “**기획총괄심의관이 지정한 업무**” 부분 삭제 필요 ⇨ 사법지원심의관, 사법정책심의관의 분장사무에도 위와 같은 표현은 없고 ‘**실장이 지시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음

◆**現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 제3항 별표[1-1]

심의관	분장 사무
기획총괄	1.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 보좌 2. 여러 실·국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조정 등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업무
기획조정	1.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총괄심의관 보좌 2. 사법행정과 재판과정에서의 소통정책의 기획 및 집행 3. 복지정책의 총괄 기획 및 집행 4.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총괄심의관 이 지정한 업무

- **[예외[1]]** 기획총괄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특정한 업무 중 일부를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이 맡게 된 경우에만 해당 심의관이 기획총괄심의관의 결재를 받음
- **[예외[2]]** 기획총괄심의관은 시설, 기술 업무와 관련해서는 시설담당관, 기술담당관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관리, 감독 업무를 보좌하므로 시설담당관, 기술담당관에 한하여만 중간 결재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나. [각론] 구체적인 담당 업무 예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1-1]**◆

심의관	분장 사무
기획총괄	1.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 보좌 2. 여러 실·국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조정 등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업무

▣ 각종 TF 조직 및 운영 업무

- 대법원장님 재임 기념 백서 발간 실무지원팀장

- CJ 전환기 준비반(예: 미래사법정책연구위원회) 실무지원단의 팀장

■ 각종 위원회의 실무지원팀장

- 법원행정처장 자문위원회의 실무지원팀장
 - 미래사법자문위원회, 헌법자문위원회, 사법정보화자문위원회 및 사법국제화자문위원회 등
- 사법행정위원회의 실무지원단장
 -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2016년 출범 예정), 법관윤리심의위원회(2017년 출범 예정), 사법정책기획위원회(미정) 등
-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실행위원회의 실무지원팀장
 - 사법정보화 전략위원회 등

■ 각종 행사의 준비팀장

- 국제법률심포지엄 준비단장
- 대한민국 법원의 날 TF 팀장

■ 對 국회 업무

-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준비팀장
- 각종 입법활동에서 기획조정실장 보좌 ⇨ 국회의원, 전문위원 접촉

■ 각종 대외 업무

- 법무부 검찰과장, 기재부 국고국장 또는 국유재산심의관 등 상대
- 한국법학원 법률가대회 준비
- 한일법관워크숍 준비 업무

■ 시설 및 기술 관련 기획조정실장 보좌

- 사법시설 신·증축 관련 설계와 공사진행 점검 및 감독, 집행실적 점검,



사법시설 예산 및 부지확보, 對 국회 및 對 기재부에 대한 시설관련 현
안의 해결, 전국법원 시설비 배정 등

- 시설 관련 지출에 관한 재무관
- 청사관리현황시스템의 시삽
-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위원, 법원청사건축위원회 주무위원

▣ 법관 및 법원 구성원 여론 동향 파악

- 지원 월간주요상황보고 취합
- 코트넷 운영위원회 위원장

▣ 기타

- 사법연수원 법관연수의 강의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주무위원
-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 간사
 - 4월, 10월에 지급하는 법관직무성과금 지급 업무
-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대법원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협의회 회장
- 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
-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대법원 가인연수관 관리운영위원회 위원
- 대법원 청사관리위원회 위원

5. 향후 계획

- **2017. 1. 중 ⇨ 기획총괄심의관 신규 보임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 ⇨ 2월 법관 인사 관련 임시 대법관회의에서 의결
 - 기획조정심의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별표[1-1]의 기획조정심의관의 분장 사무 중 “기획총괄심의관 보좌”, “기획총괄심의관이 지정한 업무” 부분 삭제

- **2017. 2. 1.경 정기인사 발표 後 각종 규칙, 예규 등 정비**
 - 2016. 2. 정기인사 때 기획총괄심의관을 다른 직책으로 변경한 예규 목록을 추출한 후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직책을 다시 기획총괄심의관으로 변경

<개정 필요한 예규 등 목록(예시)>

유형	예규·내규 등	주요 개정 내용
내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에 기획총괄심의관 추가
내규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사법등기국장에서 기획총괄심의관으로 변경
내규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기획조정실장에서 기획총괄심의관으로 변경
예규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 지침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 간사를 기획조정심의관에서 기획총괄심의관으로 변경
예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코트넷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사법정책총괄심의관에서 기획총괄심의관으로 변경

<끝>

안철수의 대선공약 분석과 그 시사점

2012. 9.

사법정책실

1. 총설: 소통과 통합을 통하여 복지·정의·평화를 지향
2. 3가지 요소: 소통과 통합의 여야 대타협 및 국민 설득을 통한 스웨덴 모델 추진
 - 가. 복지 - 핵심 민생 영역의 ‘기초적인 안전망’ 부족으로 인한 불안의 해소
 - 나. 정의 -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사법개혁(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후 법관 인사 개혁, 고위 공직자 수사처 신설)
 - 다. 평화 - 복지와 정의의 기반, 통일은 사건이 아닌 과정
 - 라. 지향점 - 복지, 정의, 평화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복지의 증진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선순환 혁신 경제, 혁신 복지
3. 안철수의 정책 개발단
 - 가. 전문가 네트워크 ‘내일’ 과 선거캠프 ‘진심캠프’
 - 나. 안철수 후보의 선거전략: SNS 활용, 수평적 네트워크
 - 다. 안철수 캠프의 주요인사
 - (1) 강○○, 박원순, 고 김○○ 의원 관련 인사 다수
 - (2) 조○○ 변호사, 금○○ 변호사, 강○○ 변호사, 정○○ 변호사, 김○○ 미국변호사 등 다수의 변호사 포진
 - 민변 출신, 법무법인 원 관련 인사 다수가 특징
 -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내지 고문변호사 : 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 전 장관, 심○○ 전 고검장
 - (3) 장○○ 교수 합류(2012. 9. 27.)
 - 경제 민주화 강화
 - 호남의 명문가 출신
 -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 박원순 시장과 깊은 인연



I. 총설: 우리 사회 지향점으로서의 복지·정의·평화

가. 우리의 역사

▣ 50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

- 처음 25년 먹고사는 문제 해결
- 후반 25년 민주화 성취

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핵심: 복지, 정의, 평화

▣ 복지: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선순환되는 넓은 의미의 복지

- 개인의 불안 → 집단 이기주의(사회 공동체 의식 급속하게 약화)
- 현재의 문제: 주거, 보육, 교육, 건강, 노후 등 민생의 기본적인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불안
- 사회적 안정망의 확보: 실패한 사람도 든든한 사회적 안정망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지식경제 사회

▣ 정의

- 공정한 기회와 규칙이 보장되어야 함
- 정의로운 복지국가 내지 공정한 복지국가
- 정의의 세가지 요소: 달리기 예 비유
 - ① 출발선: 공평한 기회 부여
 - ② 본 경기: 공정한 규칙과 이를 감독할 심판
 - ③ 경기 후: 경쟁에서 진 사람에게 재도전의 기회 부여

▣ 평화

- 장기적으로 통일을 추구하면서 단기적으로 평화체제를 구축



- 평화는 복지와 정의의 토대가 됨

다. 해결방안: 제한된 자원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합의(증세 등 중산층의 부담 증가)가 필요

▣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복지, 정의, 평화의 시대적 과제 추구

▣ 소통과 합의의 중요성

- 우리가 원하는 미래사회, 복지사회의 예: 스웨덴, 독일

- 보수·진보 사이의 상호보완적 대타협

▣ 정치와 전쟁은 달라야

- 전쟁은 적을 믿지 않으면서 싸우는 것

- 정치는 상대방의 궁극적 목적도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 아래 싸우는 것

II. 3가지 요소에 대한 검토

1. 복지

가. 핵심 민생 영역의 기초적인 안전망 부족으로 오는 광범위한 불안의 해소

나.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 전략적 조합 필요

▣ 보편적 복지(낙인 효과 방지)와 선별적 복지(국가 재정 건전화)의 전략적 조합

▣ 보편적 복지: 보육, 교육, 건강 등 민생 핵심 영역 보편적으로

▣ 선별적 복지: 장애인, 극빈층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우선적으로



- ▣ 새누리당의 선별적 복지와 통합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의 선별적 선택 조합 채택

다. 보육

-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대상 아동의 30% 정도 수용 가능하게
- ▣ 아동수당제(일정 연령 이하 자녀 둔 가정에 매달 소정의 현금 지급) 등 검토

라. 의료

- ▣ 의료 민영화에 반대
- ▣ 건강보험의 보장성(현재 약 60%) 확대 추구

마. 교육

- ▣ 장기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 ▣ 대학등록금 낮출 수 있도록
- ▣ 현재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바. 주거

- ▣ 경기부양보다는 주거안정이 중요
- ▣ 국민연금 자금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투입
- ▣ 임대차 보호기간 3년으로 연장, 보증금 증액 상한제

사. 스웨덴 모델: 안철수 후보의 이상적 모델

- ▣ 부자라서 복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서 부자가 되는 나라
- ▣ 여당·야당의 협력 아래 복지체제 완성
- ▣ 능력만큼 내고 필요한 만큼 쓰자



아. 세금

- ▣ 조세 정의 강화: 징벌적 벌금제
- ▣ 법인세율: 실효적 세율을 높이자
 - 세율 자체는 OECD 평균과 비슷, 실효세율 매우 낮음
 - 각종 감면제도의 개편
- ▣ 금융 거래 관련 세금: 거래세 아닌 투자이득에 대한 과세, 외국 투
기적 세력 개입 방지
 -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점진적 확대
 - 파생상품거래세나 단기외환유출입에 대한 토빈세(브라질의 금융거래세)
 - 거래세보다는 평가이득에 대한 소득세 위주로

2. 정의

가. 경제민주화의 의미

- ▣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
 - 정치민주화
 - 정치권력의 독점, 곧 독재에 반대하고 국민 누구나 민주적 권리를 누림
 - 경제민주화(독점 반대, 공정한 기회) = 정의
 - 공정한 시장경제
 - 소수가 특권을 가지고 시장을 독점하여 좌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누구
나 공정한 경제 주체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
 - ① 출발선에서의 공평한 기회, 뒤처진 사람도 출발선에 나란히 서도록 국
가가 부추김, ② 경쟁과정에서 특권이나 반칙을 허용하지 않고 공정한 규
칙이 지켜짐, ③ 운이 나쁜 패자도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보



나. 재벌개혁

- ▣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불합리한 대기업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분리해서 봐야
 -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 특혜 폐지, 중소기업 육성
 -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의 방화벽 구축
- ▣ 현재 재벌의 문제
 - 자신들의 노력 이외에 국가적 지원과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성장
 - 그럼에도 재벌들이 이익을 독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음
 - 삼성동물원, LG동물원
 - 대기업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과 독점계약을 맺은 후 계약단가 등에 횡포를 가함
 -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생성한 생태계(동물원)를 벗어나기 어려움
- ▣ 해결방안
 - 기업집단법 제정
 - 개별 기업 주주 중심의 기존의 법률을 대체하고 기업집단의 폐해를 방지 하면서 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는 기업집단법 제정
 - 내부거래나 편법상속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
 -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입장: 시장만능주의 경계
 - 규제는 줄이되 감시는 강화
 - 개혁 필요: 금산분리, 순환출자 제한 필요(유예기간을 주되 단호하게 철폐 되어야)
 - 검토 필요: 출자총액제한 제도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재검토, 불공정거래 관행 척결
 - 주주 뿐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특히 종업원의 권익 보호(비정



규칙까지 포함)

- 기업의 사회적 책무 고려(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 재벌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 국가는 입법취지대로 법을 집행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
- 경제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엄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동의
- 머니게임과 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범죄 발각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수익보다 몇 배 큰 배상을 하도록 하여 범죄의 지를 소멸시켜야

다. 사법개혁 관련

- 법관이 정치적 고려에 따른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후의 법관 인사제도 등 개혁
- 검찰의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었다면 고위 공직자 수사처 신설 등 권력 분산 방법

라. 공무원 인사

- 상시적인 인재추천위원회 설립, 검증위원회 통해 인재 검증

3. 평화

가. 역대 정권의 정책에 대한 평가

- ▣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 투명성 부족, 퍼주기 논란 등 남남갈등
- ▣ 이병박 정부의 채찍 위주 강경책: 설득력 없는 기계적 상호주의

나. 통일은 사건이 아닌 과정

- ▣ 남북대화과 경재협력 재개 필요



- 금강산, 개성관광의 재개
- 개성공단의 확대
- ▣ 식량 및 의약품 지원은 인도적으로 필요
- ▣ 탈북자 문제: 중국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복송 최대한 막아야

III. 안철수 후보의 정책 개발단

1. 전문가 네트워크 ‘내일’ 과 ‘진심캠프’

- ▣ 내일
 - 각계 전문가 그룹과 수평적 소통을 통해 ‘안철수의 생각’ 을 대선공약으로 집대성
- ▣ 선거캠프 명칭
 - 국민 공모를 통해 안철수의 ‘진심캠프’ 로 정함

2. 안철수 후보의 선거전략: SNS 활용, 수평적 네트워크 강조

가. AHN's SPEAKER

- ▣ facebook에 9. 16. 개설된 대변인실





- ▣ 안철수 후보자의 각종 정책이나 일정을 공유함
- ▣ 소통 채널 오픈
 - 페이스북에 안철수 후보에게 바라는 사항 기재하도록 함
 - 현재(목)까지 댓글 4,644개

나. 정책 네트워크 내일

1) 첫번째 포럼 “국민이 선택하는 내일을 위한 혁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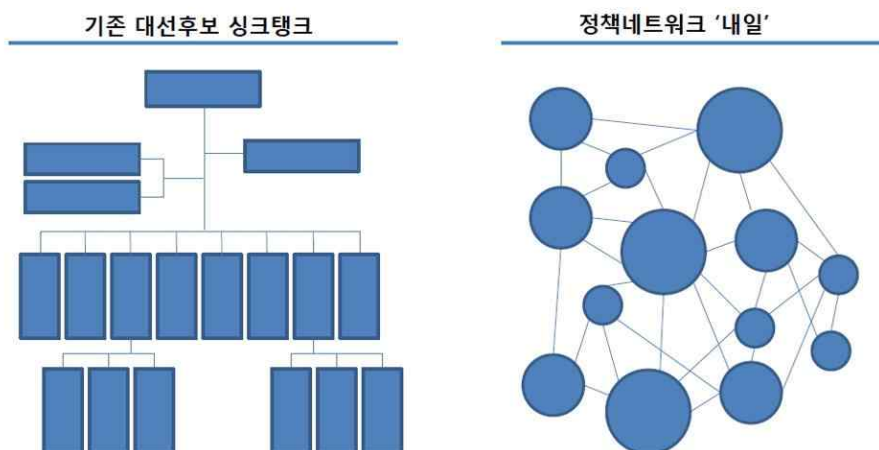
- ▣ 일시: 2012. 9. 23.
- ▣ 성격: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중심의 독립적 포럼
- ▣ 참여자: 제주올레 안○○ 사무국장, 호○○ viki 대표, 이○○ 씨즈 대표, 정○○ 교수
 - 소통의 과정을 거쳐, 국민이 참여하고 선택하는 정책을 개발
 - 생태계 활성화 중심의 기업정책: 사회적 성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정부 구매에 우선 순위 등)
 -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혁신을 추동하는 방향으로 변화 필요

2) 두번째 포럼: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경제’

(사진)

- ▣ 일시: 2012. 9. 25.
- ▣ 장소: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이크임팩트
 - 공익강연회 개최하고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
- ▣ 논의 내용: 경제 민주화와 복지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 해결 과제
 - 경제 민주화와 복지가 선순화되는 경제구조
 - 복지, 재정 조세를 아우르는 통합적 계획
 - 복지와 성장의 연결고리는 혁신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

3) 안철수 캠프의 특성: 평등한 전문가 포럼 네트워크



3. 안철수 후보의 싱크탱크



1) 구성의 특징

- ▣ 변호사 출신 측근과 정책을 챙길 외부 인사 그룹
- ▣ 강○○, 박원순, 고 김○○ 의원 관련 인사 다수
- ▣ 민변 출신, 법무법인 원 출신 인사 다수

안철수 캠프 주요인사

상황실장	김□□ 변호사
법률지원단장	강□□ 변호사
대외협력팀장	하□□ 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기획팀장	한□□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민원실장	박□□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관
메시지팀장	이□□ 시사프로그램 작가
홍보팀장	김□□ 전 미래에셋 계열사 대표
정책기획팀장	이□□ 전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정책팀장	김□□ 전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팀장	허□□ 전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행정실장	김□□ 사업가

2) 캠프 총괄: 박○○ 전 통합민주당 의원

3) 측근으로서 보좌하는 스태프: 대부분 변호사

- ▣ 비서실장: 조○○ 변호사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원 변호사, 전 영화사 봄 대표이사, 강○○ 전 장관의 서울시장 후보 시절 대변인, 전 민변 사무차장(1998년)

- 법무법인 원

-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등법원장 이○○ 변호사(6기), 전 민변 사무총장 윤○○ 변호사(16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 변호사(16기), 안



○○ 변호사(16기)

- 고문변호사: 강○○, 심○○, 이○○ 변호사 등

■ 상황실장: 금○○ 변호사

■ 법률지원단장: 강○○ 변호사 - 고려대 법대 83학번, 1986년 사시 합격, 20년간 검사로 생활하다가 2011. 9. 순천지청장 재직 중 퇴직, 로펌 A1 변호사

■ 대변인: 정○○ 변호사 - 민변 최초 여성 사무총장이었음, 현 민변 회장 백○○ 변호사의 부인

■ 선거기획·컨설팅: 김○○ 변호사 - 법무법인 원 소속 미국 변호사, 선거 및 공공기관 컨설턴트

4) 외부 전문가 그룹

■ 홍○○ 서울대 교수, 정○○ 한양대 교수, 장○○ OEC 대표, 이○○ 제주대 교수, 이○○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 서울시립대 교수, 박○○ 홍익대 교수

4. 장○○ 교수 안철수 캠프 합류(2012. 9. 27.)

1) 의미

■ 경제 민주화 강화

2) 담당할 업무

■ 안철수 후보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경제민주화포럼 구성 및 외교 안보 통일을 제외한 정책 분야 공약 전반 총괄

■ 현재 포럼 진행하고 있는 홍○○ 서울대 교수는 간사 격인 정책 실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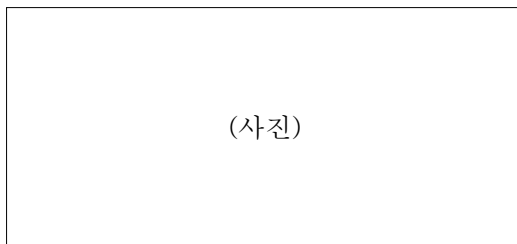


3) 경력

-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펜실베니아대 와튼경영대학원 박사
- 고려대 교수(경영학과 학장)
- 1998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삼성전자 주총에서 소액주주 대신해 13시간 30분 동안 경영 문제점 지적
- 2001년 12월 이견희 회장과 임원들에게 977억 원 배상 소액주주 승소 판결

4) 호남의 명문가 출신

- 전 여성가족부 장관 장○○, 전 열린우리당 정책실장 장○○과 형제
- 전 국회의원(15대, 16대), 산업자원부 장관(2001년) 장○○의 조카
 - 대검 공안 1, 2과장 등을 거친 후 PD 수첩 사건 때 처벌 곤란 의견을 내고 사표를 쓴 임○○ 전 부장검사가 장○○ 전 장관의 사위임
- 장○○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사촌
- 참고: 장○○ 교수 집안 가계도



5) 주요 주장

- 공정한 경쟁 보장 및 양극화 해결을 위한 재벌개혁
-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노동개혁
- 노동자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희생 없는 경제

- ▣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용하는 포용성장

6) 보수 언론의 반응

- ▣ 이○○ 전 부총리가 진보 진영 내에서 비판을 받자 장○○ 교수 영입
- ▣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연계설
 - 박원순-백낙청-이해찬의 ‘진보빅텐트 2.0’ 플랜(야권단일후보를 통한 대권 탈환 목표)
 - 장○○ 교수는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과 참여연대에서 리더 역할
 - 현재 안철수 캠프에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캠프의 멘토단, 법률특보, 대변인 등 대거 포진

IV. 안철수에 대한 평가

1. 안철수의 생각에 대한 11가지 생각: 흑기사인가 과대망상자인가: 칭송과 비판의 공존



1) 긍정적 평가: “상식의 깃발을 든 흑기사”

- ▣ 이○○이 쓴 ‘안철수가 이길 수 있다’ (정은문고)
 - ‘안철수의 생각’ 에 대한 40대 남자 8명의 대화록



- 상식과 현실의 일치를 요구하는 질문을 대신 던져준 흑기사(10쪽)
- 윤○○의 '안철수를 알고 싶다'(씽크파워)
 -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 때가 묻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강점(152쪽)
 - 도전은 힘이 들 뿐 두려운 일이 아니다!
- 이○○이 쓴 '안철수 신드롬'(평단문화사)
 - 안철수 =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평가
 - 헌신, 나눔 등의 공적 가치를 몸소 보여줌. 당선이 확실한 서울 시장도 양보했으니 저런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22쪽)

2) 부정적 평가

- 정○○의 '착한, 너무 착한 안철수'(기과랑)
 - 놀라운 위선자, 과대망상형 인간
 - '정치에 참여할지 여부는 내 욕심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 이라는 그의 말을 '자신의 이야기를 남 말하듯 하는 이런 버릇은 위장하고 숨기는 전략의 하나' (36쪽)로 평가
- 황○○가 쓴 '안철수, 만들어진 신화'(미래지향)
 - '안철수 신화는 출발부터 거짓이었다' 고 주장
 - 안철수 거품을 조목조목 지적
- 박○○의 '안철수의 생각과 다른 생각'(초록세상)
 - 안철수의 '상식과 비상식' 은 흑백논리의 극치
- 조○○의 '안철수 검증 보고서' (조○○닷컴)
 - 안철수가 내세운 '복지·정의·평화·소통·합의' 가 얼마나 공허한지, 경제·외교·안보 분야에 얼마나 무지한지, 이념적으로 얼마나 좌로 치우쳐 있는지 지적



3) 중립적 평가

▣ 강○○가 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알렘)

- “민주통합당 없는 안철수 대통령은 불가능하다. 막판 후보 단일화로 대통령이 된다 한들 성공할 수 있을까요? 깃발 들고 100일 만에 모인 이들이 국가 경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39쪽)라는 의문 제기

▣ 안철수 포럼21의 ‘안철수는 대안인가 재앙인가’(미다스북스)

- 안철수 현상의 실체는 엄존한다는 전제 아래 이 현상이 나아갈 길, 부정적 평가와 비판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
- 기성 정당 입장에서는 재앙, 국민 입장에서는 희망

▣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들이 쓴 ‘안철수를 읽는다’ (한겨레)

-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직을 잘 수행 못할 것 같다. 지금 그에게 쏠리는 지지의 상당 부분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60쪽)

2. 위기론: 현재 정치적 메시지가 없으며 조만간 컨벤션 임팩트가 떨어질 것으로 보임

▣ 정치평론가 유○○ 박사

- 출마 선언 이후 특별히 인상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메시지가 상당히 빈곤하다. 혁신경제 등을 통해 야권층과 중도층을 같이 껴안고 가야할 것

▣ 정치평론가 고○○ 박사

- 높은 지지율은 컨벤션 임팩트 때문에 만들어진 것 임팩트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없다면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음
- 정치채신의 이미지가 강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브랜드를 잠식해 버릴 것



▣ 이○○ 리얼미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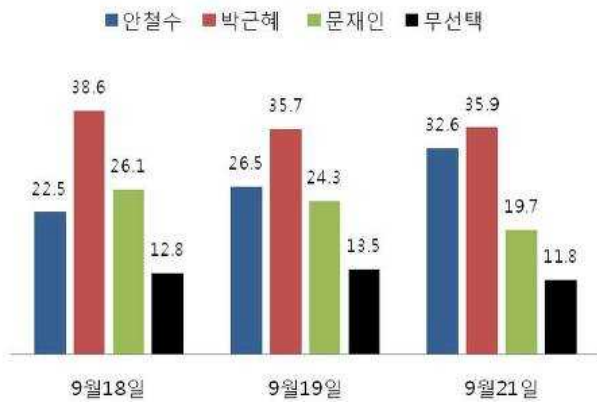
● 후보 단일화까지 큰 이벤트 없어 지지율 가락 가능성 높음

3. 여론조사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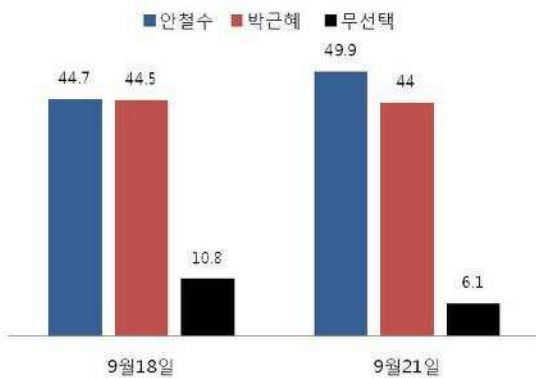
가. 안철수 출마선언(9. 19.) 이후 여론 조사 결과

● <http://blog.daum.net/espoir/8126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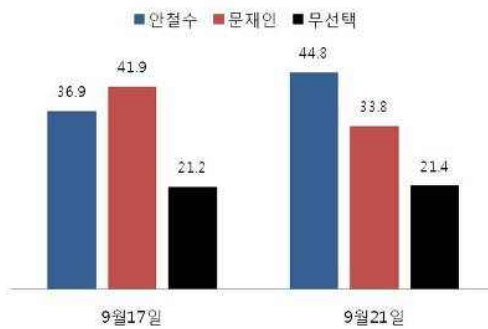
다자대결(9.18~21)



양자대결(안철수-박근혜/9.18~21)



양자대결(안철수-문재인/9.18~21)



▣ 안철수 후보의 출마선언으로 인한 지지율 상승이라는 ‘컨벤션 효과’가 매우 큼

- 다자대결시 안철수 후보 지지율 10.1% 급등, 문재인 후보 6.4% 급감
-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 우위를 점함



▣ 무선택자 비율이 시사하는 점

-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자 대결의 경우 무선택자가 21.4%에 이룸
 - 확고한 박근혜 후보 지지자이거나, 두 후보 중 누가 후보자가 되더라도 야권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로 판단됨
-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자 대결 무선택자가 급감함(10.6%→6.1%)
 - 안철수 후보가 출마선언을 통해 중도적인 유권자들을 상당수 흡수한 것으로 판단됨

나. 안철수 출마선언 후 여론 조사

	안철수 vs 박근혜	문재인 vs 박근혜	박근혜 vs 안철수 vs 문재인	비고
미디어리서치 (9/21~22)	49.9% vs 41.2%	45.9% vs 45.0%	38.5% vs 31.2% vs 19.1%	1000샘플 95%신뢰수준 ±3.1%p
KSOI (9/21~22)	49.7% vs 44.6%	44.6% vs 48.9%	39.6% vs 29.0% vs 20.1%	1500샘플 95%신뢰수준 ±2.5%p
월드리서치 (9/21~22)	49.9% vs 45.1%	47.2% vs 47.5%	37.7% vs 32.2% vs 20.7%	1000샘플 95%신뢰수준 ±3.1%p
한국리서치 (9/22)	50.6% vs 39.9%	47.7% vs 42.0%	-	1000샘플 95%신뢰수준 ±3.1%p
리얼미터 (9/21~22)	47.4% vs 44.2%	46.3% vs 45.8%	38.3% vs 29.7% vs 20.2%	1500샘플 95%신뢰수준 ±2.5%p
조원씨앤아이 (9/22~23)	49.5% vs 46.3%	46.3% vs 46.0%	43.1% vs 31.2% vs 20.9%	1000샘플 95%신뢰수준 ±3.1%p

안철수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양자 대결	지속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우세(다만 오차 범위 내 또는 근치)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양자 대결	오차 범위 내 또는 근처에서 결과가 엇갈림

다. 추석 앞둔 여론 조사 결과

1) 각 여론조사

▣ 리얼미터(9. 26.~9. 27)

- 3자 대결 결과: 박근혜 35.9%, 문재인 21.8%, 안철수 31.5%



- 박근혜 대 안철수 - 41.2% : 51.7%
- 박근혜 대 문재인 - 45.5% : 48.3%
- 문재인 대 안철수 - 36.4% : 44.1%

▣ 갤럽(9. 24.~9. 26. 942명 대상)

- 3자 대결 결과: 박근혜 39%, 문재인 21%, 안철수 30%
- 박근혜 대 안철수 - 45% : 47%
- 박근혜 대 문재인 - 48% : 44%
- 문재인 대 안철수 - 45% : 39%

2) 여론조사 결과 비교

- ▣ 3자 대결에서는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의 순
- ▣ 양자 대결

대결 구도	결과
박근혜 대 안철수	미약하게 안철수가 우위
박근혜 대 문재인	결과 엇갈림
문재인 대 안철수	결과 엇갈림

4. 추석 이후 동향 예측

- ▣ 추석 전후로 공약이 구체화되고, 다문계약서 등에 관한 검증의 해결 여부에 따라 지지율 변화 가능

존경하는 법관 여러분께.

1. 최근 언론보도에 의해 제기된 의혹으로 인한 충격과 상심이 크실 줄로 압니다. 법관 여러분들이 국민을 위한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처럼 당혹스런 의혹과 법관사회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보도가 난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특히 신문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사발령 배경을 단정 짓는 자세한 보도가 이루어지면 서 복합적인 심적 고통을 겪고 있을 이탄희 판사님을 생각하면 더욱 더 그러합니다.

2. 법관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구에 의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사기구와 관련된 업무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기에 조사주체나 사법행정 주체가 아닌, 조사대상자 개인의 자격으로, 전문과 정황에 의한 추측을 대부분으로 한 일방적 보도내용 중 명백한 허위부분에 대하여 사실을 밝혀 드리고 싶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으면서 법원행정처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이와 같은 글을 올리는 이유는, 기사가 제기하고 있는 ‘법관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그 거부로 인한 징계성 인사조치’라는 의혹이 작게는 30년을 법관으로 살아온 저 자신, 크게는 법원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 및 갖가지 추측들로 인하여 자칫 진상조사 이전에 진실과 거리가 먼 잘못된 사실 인식이 고착되어 버리지 않도록, 법관 여러분들의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아 버린 설마 하는 불안과 불신, 의혹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혀 진정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 평생 가장 큰 불신과 비난의 중심에 서 있지만 용기 내어 말씀을 올립니다.

3. 최근 현안 관련하여 제가 경험하거나 발생한 사실관계를 일자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경향신문 3. 6.자 기사내용

- ▣ 이탄희 판사는 2월 20일자로 부임을 앞두고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3월25일로 예정된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 그러나 이탄희 판사는 지난달 법원행정처에 위법한 지시에 응할 수 없다며 강력히 항의하

고 사표제출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2월 20일 출근 2시간 만에 이탄희 판사를 원래 소속인 수도권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인사를 냈다.

나. 일자 별 상황 정리

■ 2. 9.(목)

- 지법부장 이하 정기인사에서 이탄희 판사를 기획제2심의관으로 겸임 발령

■ 2. 10.(금)

- 인사차 차장 사무실을 방문한 이탄희 판사와 약 1분 정도 의례적 인사를 나눔. 임○○ 심의관, 기획조정실 전입법관 윤○○ 판사도 함께 옴

■ 2. 13.(월)

-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정리 공지글 코트넷 게시

■ 2. 16.(목)

- 김○○ 인사총괄심의관으로부터 이탄희 판사가 출근하자마자 안양지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소식을 들음
- 점심시간 무렵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이탄희 판사와 상당히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사직의사 철회를 간곡히 권유함
 -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포함한 커뮤니티 관련업무가 기획2심의관의 주된 업무가 아니고, 설령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없어도 제2, 제3의 유사한 연구모임이 필연적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없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법관사회 내부의 반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고려하면 이를 무릅쓰고 강행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
 - 이탄희 판사는 계속하여 중복가입 정리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답변을 요구하여 다른 이유가 많지만 연구회 견제목적도 일부 있다고 답변

■ 2. 17.(금)

- 김○○ 수석부장으로부터 이탄희 판사가 2. 18.(토) 오전 9시에 전화를 할 예정이라고 전달받음
- 김○○ 수석부장을 통해 이탄희 판사에게 오전 11시에 전화를 하겠다고 전달 요청

■ 2. 18.(토) 오전

- 이탄희 판사 부인(오○○ 변호사)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안양지원으로 복귀시켜주면 조용히 재판업무에 전념하겠다는 의견 표명

■ 2. 18.(토) 오후

- 오후 2시경 주변 지인에게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보냄
- 오후 6시 이후 사법정책연구원 근무를 권유하는 취지의 의사타진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무조건 안양지원 복귀를 희망한다는 의견 표명

■ 2. 20.(월) 오전

- 이탄희 판사 겸임발령 해제 인사명령
- 중복가입 정리 유보입장 코트넷 공지

4. 위 일자별 상황은 관련자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통화일시, 문자메시지, 카톡 및 코트넷 공지문 등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 사실관계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임종헌 차장

이 2. 10. 사무실에서 다른 판사들과 함께 인사차 방문한 이탄희 판사를 약 1분 정도 만난 후 사직서를 제출한 2. 16. 점심시간 무렵까지 이탄희 판사를 직접 대면접촉을 하거나 전화통화 한 적이 없어 실제로 어떠한 지시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차장이 행정업무경험이 전혀 없는 이탄희 판사에게 부임하기도 전에 그 직근 상급자인 기획조정실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3. 25. 자학술행사 축소방안 마련해 실행하라’는 예민한 내용의 업무지시를 한다는 것은 사법행정 업무처리 관행상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점, 2. 18. 이탄희 판사가 차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강력히 안양지원 복귀를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검임발령 해제 인사명령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진 인사명령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향신문의 ‘법관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그 거부로 인한 징계성 인사조치’에 관한 기사내용은 진실과 거리가 먼 명백한 허위보도(or 잘못된 보도)입니다.

5. 이상, 제가,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 개인의 절박한 심정으로, 편견 없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합리적, 이성적으로 실제적 진실을 밝힐 것을 사명으로 하는 법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탄희 판사가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보직인 법원행정처 근무를 갑자기 희망하지 아니한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이탄희 판사 본인의 구체적 인 불희망 사유에 대하여는 이제 곧 객관적인 조사기구가 구성되어 공정한 사실조사에 의해 밝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차장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조사 결과에 대하여 선의로 포장하거나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가 정의롭고 신속하게 해결되어 궁극적으로 법원이 하루빨리 안정되고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위상을 지키고 광범위한 법원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사법행정에는 누가 이를 담당하더라도 효율성, 신속성, 집행성 등 일정 부분 재판과는 다른 성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표출된 안타까운 불신의 감정들을 보면서 제가 행정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작 법관 여러분의 불편을 진정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법원과 법관들을 위해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들에 정작 법관 여러분의 의사와 희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구나 하는 반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법행정의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그러

한 속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저 또한 한 사람의 법관으로서, 언론보도와 같이 사법의 신뢰와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음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임종헌 올림

■ 2. 9.(목)

- 지법부장 이하 정기인사 발표: 이탄희 판사 기획제2심의관 겸임 발령
- 김○○ 부장 설문조사 메일 발송

■ 2. 13.(월)

-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정리 공지글 코트넷 게시됨

■ 2. 13.(월) ~ 2. 14.(화)

- 어느 날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탄희 판사가 인수인계 위해 행정처에 와서 인사실도 인사차 방문 ⇨ 개인적으로 10분 정도 대화하였으나, 행정처 근무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임. 이 판사는 기획심의관 업무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도 상당한 열의를 보였음

■ 2. 16.(목)

- 오전 9시 무렵 이탄희 판사에게서 전화가 와서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함. 자세한 사정은 설명하지 않고, 전날 임○○ 판사와 박○○ 부장이 전화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사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음. 재판부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대법원장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재판부로 복귀하는 것은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 사직하겠다고 하는 입장이었음. 자신이 알게 된 내용은 비밀로 유지하고 조용히 사직만 하겠다고 하였음
- 그 직후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였고, 이탄희 판사는 곧바로 기초실장님께 전화로 사직의사를 알린 것으로 알고 있음
- 그 후 차장님을 간단히 뵙고, 직접 만나 사직을 만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양 지원으로 찾아감. 주차장에 대기하면서 전화연락을 계속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던 중 점심 무렵 간신히 연락이 됨. 차장님께서 직접 만나 설명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자 만나는 것은 부담스럽고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음. 이탄희 판사는 곧바로 사무실 전화(당시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다고 함)로 차장님께 전화를 하여 잠시 간 통화를 하였음. 인사총괄심의관 통해 차장님과 전화통화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만난 후 인근 식당에서 1시간가량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음. 그렇지만 이탄희 판사가 이번 문제에 관하여는 언급하는 것을 자꾸 회피하여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음. 당시 이탄희 판사는 본인을 기획심의관으로 발령낸 것 자체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에 이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일단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음. 이 점은 어느 정도 납득한 것으로 보였으나, 차장님과 토요일까지 고민해 본 후 거취에 관하여 답변을 주기로 이야기가 되었다면서, 그 후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인 사정을 말해 주겠다고 하였음. 저에게 “너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 “차장님과 이○○ 실장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은 자세히 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음. 토요일까지 고민해 본다고 말은 하였지만, 이미 마음을 상당히 굳힌 듯한 느낌이었음. 헤어지면서 설사 행정처에서 보직을 전환하거나 재판부로 복귀하는 것은 몰라도 사직의사만은 꼭 철회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였음
- 사무실로 복귀하여 오후와 저녁에 몇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고, 인사총괄심의관과 자택으로라도 찾아가 보자고 하여 인사총괄심의관이 오○○ 변호사 통해 연락을 하였으나 결국 거부의 뜻을 표함

■ 2. 17.(금)

- 이탄희 판사에게 사직을 간곡히 만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몇 차례 보냈으나, 답장은 없었음

■ 2. 18.(토)

- 이탄희 판사가 오후 1시 무렵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행정처 심의관 워크숍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계획된 가족여행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메일 발송
- 오후에 인사총괄심의관, 차장님이 이탄희 판사와 통화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재판부 복귀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받고, 인사실에서는 후속 인사를 준비함

- 이후 이탄희 판사와 직접 연락을 시도한 적은 없고, 2. 26.(일) 안부 메시지만 한 차례 주고받음



형사부 항소, 합의, 단독부장판사 명단(안-검토중)

2017.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1. 항소부장

순번	기수	이름	성별	생년	출생	고교	대학	경력	부
1	22	오○○	남	1968	대구	영남고 (대구)	성균관		1부
2	23	김○○ (유임)	남	1968	서울	영락고 (서울)	서울대		4부
3	24	장○○ (유임)	남	1961	강진	경성고 (서울)	고려대	- 교수	5부
4	24	김○○ (유임)	남	1963	강릉	강릉고 (강원)	서울대	- 연구관	8부
5	24	이○○ (유임)	여	1969	서울	잠실여고 (서울)	한양대	- 연구관	9부
6	25	이○○	남	1963	인천	남강고 (서울)	서울대	- 연구관, 부장연구관	2부



2. 합의부장

순번	기수	이름	성별	생년	출생	고교	대학	경력	부
1	24	조○○	남	1966	충남 부여	남대전고 (대전)	서울대	- 조사심의관, 교수	23부
2	25	김○○ (유임)	남	1967	서울	휘문고 (서울)	서울대	- 연구관, 윤리감사관	22부
3	25	김○○ (유임)	남	1968	충남 서천	동국대사대부고 (서울)	고려대	- 연구관	27부
4	25	김○○	남	1968	전북 고창	신흥고 (전북)	서울대	- 연구관, 교수	32부
5	25	나○○	남	1969	광주	서울고 (서울)	서울대	- 연구관, 부장연구관	31부
6	25	김○○	남	1969	경북 청송	영남고 (대구)	고려대		24부
7	25	황○○	남	1970	강원 태백	경희고 (서울)	서울대	- 교수	30부
8	25	이○○ (유임)	남	1971	전북 전주	한일고 (전북)	서울대	- 형사정책심의관, 정책연구원	26부
9	25	성○○	남	1972	부산	성동고 (서울)	서울대	- 인사심의관, 비서실	33부
10	26	김○○	남	1965	경북 안동	경안고 (경북)	한양대	- 연구관, 대법원 공보관	25부
11	26	최○○	남	1966	경남 김해	김해고 (경남)	서울대	- 연구관, 교수	28부
12	26	김○○ (유임)	여	1969	부산	성모여고 (부산)	서울대		29부
13	26	이○○	남	1970	대전	영등포고 (서울)	서울대	- 형사심의관, 부장연구관, 전정국장	21부



3. 단독부장

순번	기수	이름	성별	생년	출생	고교	대학	경력	재판부
1	25	황○○ (유임)	남	1968	서울	중동고 (서울)	연세대		1단독
2	26	김○○ (유임)	남	1967	울산	낙동고 (부산)	부산대	- 연구관	8단독
3	26	이○○ (유임)	남	1967	전남 장흥	장흥고 (전남)	중앙대		14단독
4	26	이○○	남	1968	강원 양양	강릉고 (강원)	성균관		10단독
5	26	권○	여	1970	경북 포항	포항여고 (경북)	서울대		20단독
6	26	박○○	남	1972	전남 영암	인성고 (광주)	서울대	- 윤리심의관, 부장연구관	2단독
7	27	성○○	남	1965	부산	부산고 (부산)	서울대	- 연구관	3단독

4. 영장

순번	기수	성명	성별	생년	출생	고교	대학	경력	재판부
1	26	오○○	남	1969	서울	서울고 (서울)	서울대	- 민사심의관, 부장연구관	41단독
2	26	권○○	남	1970	대구	남일고 (부산)	서울대	- 국제심의관, 부장연구관	42단독
3	32	강○○	남	1974	제주	제주일고 (제주)	고려대		43단독

5. 공보관

순번	기수	성명	성별	생년	출생	고교	대학	경력	재판부
1	32	이○○	남	1977	제주	단대부고 (서울)	서울대	- 정보화심의관	6단독



형사합의 구성안(가안-검토중)

부	중요사건 번호인	재판장	우배석	좌배석
21 (선거,부패)		조○○(24) 부여, 서울대	성○○(41) 서울, 서울대	한○○(42) 전북, 한양대
22 (부패)		김○○(25) 서울, 서울대	심○○(34) 전남, 고려대	조○○(38) 서울, 성균관대
23 (부패)		김○○(25) 고창, 서울대	김○○(35) 경남, 서울대	정○○(42) 서울, 서울대 김앤장 출신
24 (경제)	김앤장	김○○(25) 청송, 고려대	김○○(41) 전북, 서울대	이○○(42) 서울, 한양대
25 (경제,식품, 보건)		김○○(26) 안동, 한양대	신○○(40) 전남, 서울대	김○○(42) 서울, 서울대
26 (성범죄, 소년)		이○○(25) 전주, 서울대	함○○(40) 대구, 서울대	박○○(42) 서울, 고려대
27 (선거,부패)		김○○(25) 서천, 고려대	신○○(41) 서울, 고려대	권○○(42) 강원, 서울대
28 (경제)	김앤장	최○○(26) 김해, 서울대	심○○(41.5) 광주, 전남대	이○○(42) 서울, 서울대
29 (성범죄, 아동학대)		김○○(26) 부산, 서울대	장○○(41.5) 대전, 경찰대, 김앤장 출신	장○○(42) 광주, 고려대
30 (외국인, 성범죄)	김앤장	황○○(25) 태백, 서울대	정○○(36) 경남, 서울대	김○○(42) 서울, 서울대
31 (외국인, 성범죄)		나○○(25) 광주, 서울대	편○○(41) 서울, 고려대	이○○(42) 구미, 서울대
32 (부패)		성○○(25) 부산, 서울대	이○○(41) 충남, 서울대	김○○(42) 경북, 고려대
33 (부패)		이○○(26) 대전 ¹⁾ , 서울대	정○○(41) 경북, 서울대	강○○(42) 제주, 서울대



1) 출생지 기준



정기국회 이후 성공적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대응전략

2015. 10. 5.

차장

1. 검토 배경

▣ 국정감사 종료 후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 개시

-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종료 후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개시되면 19대 국회 임기 내 법률안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golden time이 도래될 것임
- 현재 행정처는 법률안 통과를 당면한 사법부 최대목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총력전 태세를 구축하고 있음. 하지만 입법추진환경에 부정적 외생변수가 많이 상존하고 있어 현재 상황이 극적으로 호전되지 않으면 입법성사가 쉽지 않은 중대한 기로에 봉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상고법원 법률안 입법추진 실패시 예상되는 문제 상황

- 상고법원 법률안은 현재 사법부 최대의 역점사업임은 너무나 공공연한 사실임
- 따라서 입법추진이 실패하면 ①과거 17대 국회의 경험에 비추어 또 다시 10년 가까이 상고심 구조개혁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고, ②대외적으로 사법부의 위상이 추락하고, 법원 내부적으로도 CJ의 리더십 약화라는 최악의 위기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입법추진환경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한 대응전략 수립

- 현재 급변하는 입법추진환경에 대한 냉철한 진단·분석과 정확한 장래 예측을 토대로 ①1단계 전략으로 유리한 입법여건 구축을 위한 국면전환 대응전략과 법사위 통과 로드맵(플랜A)을 수립하고, ②2단



계 전략으로 입법추진 실패시 그 충격과 후폭풍의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출구전략(플랜B)의 수립도 필요함

2. 현재 입법추진환경에 대한 분석

가. BH

- 8. 6. CJ와 VIP 직접 면담에서 법무부와의 협상지시는 이끌어 냈으나 상고법원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얻지 못한 절반의 성공에 그침
- 하지만 핵심보좌진인 민정수석이 이미 확고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VIP에게 여러 차례 부정적 보고를 완료한 상태임
 - 따라서 법원과 법무부간 합의도출 등 기존 반대 입장을 번복할 수 있는 합당한 명분과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민정수석을 부정적 입장을 전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한계 상황임
- 아울러 상고법원안이 BH의 산적한 국정현안 중에서 VIP의 주요 정책사항으로 주목받기에는 한계가 있음

나. 법무부

- 법무부는 상고법원에 대해 종래 공식적 신중검토·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회·BH를 상대로 반대 논리를 제공하여 왔음
 - 다만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국회 법률안 심사가 개시되자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면화하기 시작했고, 특히 대법관 증원론에 대하여는 진보 세력의 최고법원 진출을 우려하는 문제인식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공식적으로 소수 증원론 주장도 개진하고 있음
- VIP의 실무협의 지시에 따라 대법원은 법무부와 협의과정에서 9월 상고법원 대안으로 대법원판사부안을 제안하고 의견제시를 요구함
 - 하지만 법무부는 민정수석으로부터 8. 10. VIP의 실무협의 지시를 전달받으면서 VIP가 CJ와 면담자리에서 사실상 상고법원에 대해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고 면담분위기를 전달받았음



- 그 결과 법무부는 **협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법원이 제시한 상고법원 대안도 민주적 정당성흡결이라는 상고법원안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대법원판사에 의한 상고심판결을 대법관에 의한 상고심판결과 동일한 평면에서 평가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종전의 확고한 반대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음.
- 대검은 상고법원문제가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내부조직 구성 문제라는 이유로 공식적 입장 표명을 극도로 자제하는 등 법무부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하지만 일선 검찰청의 전반적 분위기는 상고법원 설치로 법원조직이 확대되는 반면에 검찰은 상응하는 반대급부 부재를 이유로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특히 **최근 형사성공보수 금지 판결 이후** 그러한 반대기류가 강화되고 있다고 함

다. 국회

■ 전반적 분위기

- 여야를 불문하고 20대 총선대비 선거구 확정 등 주요 정치현안에 관심 집중되고 있어 **상고법원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현재 국회상황을 객관적 분석해 볼 때 의원들에 대한 지속적 접촉·설득과 적극적 대안 제시를 통한 입법추진 노력이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여당

- 김진태 등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반대 기류가 팽배하고 있고, 최근에는 민○○ 대법관의 후임대법관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이 야당의 구성다양화 요구에 전향적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 비판적 분위기도 당 일각에 형성되었다고 함

■ 야당

- 당내 계파간 갈등과 내분이 심화되고 있어 상고법원 자체에 대해



큰 관심이 없고 법사위에 일임하는 분위기임

- 최근 한명숙 사건의 대법원판결 선고 이후 사법부가 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정치적 판결을 하였다는 오해와 함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고법원에 대한 강경한 반대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분위기 반전의 모멘텀이 없는 한 법무부와의 협상결과를 매개로 여당 설득에 성공해도 법률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 강력한 법안 처리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야당의원들의 신뢰와 지지가 그다지 크지 않아 영향력과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ex. 지식협동조합과의 공동 정책심포지움에 여당 법사위원 뿐만 아니라 야당 법사위원도 전원이 불참)

3. 입법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 국감이후 본격적 법률안논의 시작 후 당시 외부 상황의 변화에 조응한 최적의 다양한 전략 구사 필요

나. 1단계 입법추진전략

1) 對 언론전략

- ▣ 언론의 상고법원에 대한 긍정적 집중보도를 통한 우호적 분위기 확산
- [목표] 언론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확산 ⇨ 국민의 목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법사위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함
- [활용 언론] 주요 메이저 언론 ⇨ 조선, 중앙, 동아 등(의원들이 한겨레, 경향신문보다 3대 주요 메이저 언론 기사 내용에 더 민감)
- [기사 방향 ①] 상고법원 설치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점 재확인(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으로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제도



개선 강조, 현재 상고심 지연 폐단이 두드러지는 구체적 사례, 국민 실생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소개)

- [기사 방향 ②] 올해 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각인(17대 부터 이어온 상고심제도 개선 논의 경과 심층 소개, 19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향후 개선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점 설명)
- [기사 방향 ③] 법사위 논의 지지부진에 따른 책임론 부각(작년 12 월 발의 이후 지금까지의 법안 심사 경과, 공론화 과정, 찬반 의견 의 허와 실 등 상세 소개, 결국, 법사위 소수 의원들의 독단과 오해 로 인해 제도 개선 좌초될 상황이라는 위기의식 확산 ⇨ 해당 의원 들의 심리적 부담감 가중)

2) 對 BH전략

- **민정수석을 설득하여 정면 돌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 심정적으로 반발할 수 없고 VIP가 절대 신임하는 인사¹⁾를 동원 해 VIP를 우회적으로 설득함**
- **설득논리**
 - 대안이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시비 등 문제점을 상 당부분 해소했고, **현행 헌법하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므로 큰 틀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정무적 결단을 내려도 무방하다**고 건의

3) 對 법무부전략

▣ 기본방향

- **현재 법무부의 긍정적 방향으로의 유연한 태도 변화가 기대 불가능 함을 전제로 대응전략 수립**하되, 법무부 수뇌부, 특히 상고법원 문 제에 대한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김○○ 차관을 상대로 추 가적 설득노력을 지속할 필요

1) 국가원로로서 폭넓은 식견과 합리적 판단력을 지니고 있고 VIP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이○○ 특보와 현재 현직에서 은 퇴했지만 여전히 국정 전반에 관해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 등



- 아울러 법무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최대 현안과 관심사를 분석하여 Deal 가능한 유력한 카드 제시하고 법무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

■ 법무부와 원만한 협상 타결 시

- 야당에게는 법무부와 협상 내용을 비공개하면서 법사위 1소위 대체하는 대안 조기 추진
- 다만 법사위 1소위 논의 개시되더라도, 現 1소위 구도 속에서 상고법원 법률안 가결 기대가 이한성 1소위 위원장의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 논의 주도권 행사 등 역량 부족으로 요원하므로 다음과 같은 타개책이 필요함
- [타개책] 국회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법안심사 특위 구성
 - 여야 각 2인, 영향력 있는 중진급 의원 중 상고법원안에 대한 이해도 높은 의원들로 1소위를 대체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에서의 밀도 있는 집중 심사를 통해 법률안 통과 추진

■ 법무부와 입법협상 실패시

- 법사위 단계에서 상고법관 추천위원회 등 대안을 제시함이 없이 아래 2단계 입법추진전략에 따라 최후의 정면 돌파 전략 구사

4) 對 야당전략

- 이상민 위원장은 기존 지지입장의 확고한 유지 되도록 지속적 접촉과 정서적 접근으로 인적 유대관계를 강화 필요
- 전해철 의원은 야당간사이고 서기호 의원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설득대상이나 자기 주관과 고집이 강하고 한명숙 사건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성급한 직접 접촉시도는 역효과 발생 우려되므로 일정기간 냉각기 필요.
- 전병헌 의원을 통한 우회적 설득방안 추진⇨ 전병헌 의원은 본인이



전해철 의원 설득의 책임자로 자임하고 있고, 상고법원에 대해 전폭적 지지 의사 밝히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정치인답지 않은 우직하고 솔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추진력도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전해철 의원 설득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5) 對 여당전략

- 확고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김진태 등 법사위 내 검찰 출신 위원들을 법무부와 BH의 종속변수이므로 이들을 돌파하려면 직접 설득시도보다 법무부와의 협상결과 관망후에 이를 지렛대로 하여 의원별 접촉 및 설득을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BH의 의원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법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밖에 없음
- VIP 측근으로 여당 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정현, 윤상현 의원에게 지원 사격 요청 필요

6) 대법원 국정감사 활용

- 대법원국정감사에서 예상되는 의원들의 상고법원 관련 질의에 대한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상고법원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필요
- 상고법원 도입의 진정성, 불가피성, 시급성 논리 유지, 특히 대법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상고법원이 법원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법원의 진정성을 꼭 알아 달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법사위원들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도

다. 2단계 입법추진전략

- 법무부와 입법협상 실패시에는 긴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非常의 타개 방안으로 상고법원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는 방안 모색
- 위원장과 찬성위원 설득을 통한 의사일정 변경 방식으로 전체회의 상정 논의 추진



라. 상고법원 입법추진실패시 연착륙을 위한 출구전략 모색(플랜B)

1) 플랜B 전략 착수시기 검토

- 12. 9. 정기회 종료시까지 상고법원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해 모든 사법역량을 투입하여 플랜A에 총력 매진
- 정기회에서 입법추진이 실패로 끝나면 2016년에는 임시회가 소집되어도 이미 본격적 총선국면에 돌입하여 법률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불가능함
- 따라서 12월 임시회가 소집되면 12월 임시회에서 플랜B를 구사할지 여부(경미사건 상고제한 법률안 발의 포함)에 대한 전략적 검토 필요

2) 대외적 전략

▣ 민사사건 상고기각결정제도 도입 재추진

- ① 도입 재추진필요성
 - 민사소송법 제429조를 개정하여 제423조 및 제42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상고사건(약 30%)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나머지 70% 사건의 상고이유 당부를 더욱 충실히 심리할 필요 있음 ⇨ 심리여건 악화 및 적체현상 해소 필요성
 - 법사위 1소위 통과 후 전체회의 계류 중인 개정안을 통과 추진
- ② 주요내용
 - 상고장과 상고이유만으로도 민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기에 결정으로써 종결하여 당사자의 불필요한 비용 투입을 방지하고, 상고심의 정상적 심리여건 회복

▣ 심리불속행제도의 활용 강화

- ① 적극적 활용



- 현재 약 60%인 심리불속행 비율을 80%로 제고하여 사실상 상고허가제와 사실상 동일하게 운용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

- ② 유의사항

-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활용 강화에 대해 종전과 달리 위헌결정을 할 가능성이 없는지 그 태도 변화 여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률을 그대로 두고 심불비율만 증가하는 방안은 대내외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고 오히려 외부적으로 강한 역풍을 불러올 수 있음

■ 경미사건 상고제한 방안

- 대상

- ① 소액 사건 이외에 5,000만 원 이하 등 일정액수 이하 사건
- ② 형사 고정사건 또는 벌금형 선고사건

- 효과 및 목적

- 업무경감 효과는 작으나, 제도 개선의 상징성이 있음
- 향후 상고제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법률상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상고허가제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획득함

- 개정안 (예시)

- ①안 : 명령·규칙·처분의 헌법위반이나 판례위반이 있는 경우(→ 소액사건 상고이유 확대 적용)
- ②안 :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경우 등

■ 소수증원론에 대한 방어논리 개발

- ① 개발 필요성

- 대부분 의원들이 상고심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따라서 입법추진이 좌절될 경우 현재 법무부관계자가 공청회 등에서 주장하는 대법관 소수 증원론이 대법원 의도와는 달리 과거 3·4 공화국



시절에 이미 시행한 경험이 있고, 일선법원에서도 그다지 반대하는 기류가 아니므로 법원외부의 전폭적 지지세를 얻어 입법추진 탄력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소수 증원론은 사법부 입장에서 수용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그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방어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② 방어논리

- 대법관증원과 상고법관 증원의 경제적 비용 대비, 대법관 증원론의 본질적 한계[소수증원은 현재 상고사건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비추어 근본적 해결 불가능, 다수증원은 대법원의 본래적 기능 수행 불가능]를 지적할 필요

3) 대내적 전략

■ 필요성

- 최근 일선 법관들은 올해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오해가 형성되어 있고, 상고법원 총력 추진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
- 따라서 상고법원 입법추진실패가 법원 내부적으로 CJ의 리더십 약화와 사실심 충실화, 인사제도 등 주요 사법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 불신풜조 확산을 초래하여 법원 조직 전체의 내부적 동요와 결속력 약화의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음

■ 대응방안 사전 검토

- ① 상고법원 입법실패에 대한 일선법관들의 전반적 여론 현황을 점검⇒ 근거 없는 오해와 정서적 반감을 불식시키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사전에 검토 필요
- ② 사법부 고위 인사 등의 성명 발표 여부 검토⇒ 상고법원 입법추진 실패가 법원의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관 사회의 심리적 동요를 다독이고 내부적 안정을 확보할 필요



▣ [1차 대응] 공보관 명의로 브리핑

- 브리핑 요지[상고법원 입법추진실패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유감 표명]

▣ [필요한 경우 2차 대응]

- 긴급실국장회의 후 법원행정처장 명의 OR 대법관 행정회의 후 대법원장 명의(공보관 발표)
- **현행 법령 하에서 대법원의 본래적 기능 정상화와 국민의 신속하고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단호한 의지 표명

▣ [긴급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 ⇨ 소집 O VS 소집 X

- 긴급 전국 법원장회의의 소집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외부에 알리기 좋은 계기임
- 하지만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사법부가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외부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소집의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음
- 긴급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장 커뮤니티를 통해 입법추진 경과의 이면에 대한 상세 설명(작년 12월 발의 이후 지금까지의 법안 심사 경과, 공론화 과정, 찬반 의견 등)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

▣ [3] 순회 간담회 개최

- 최근 일선 법원의 긍정적 평가와 큰 호응을 이끌어 낸 **순회간담회** 방식으로 입법추진 경과 상세 설명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CJ 임기 하반기에 들어선 현재 행정처와 일선 법원과의 긴밀한 소통 창구와 스킨십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순회 간담회를 통해 내부여론 수습을 도모할 필요**



-
- 이러한 순회 간담회의 추가실시가 법원내부의 여론무마용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향후 주기적 순회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하여 일선법원과 행정처 사이의 지속적 소통과 정보공유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할 필요



이원화 보도 등 관련 대응방안

2016. 3. 12.

인사총괄심의관실

I. 검토 배경

- 한겨레, 금주 초 대법원장님 재임 4년 관련 시리즈 보도 중 하나로 법관 인사 이원화와 고법부장 제도를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 관련 기사 보도 예정
 - 주요 예상 내용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에 역행하여 대법원장의 절대적인 인사권을 강화함으로써 법관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 함”
-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임인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에서 2016. 4. 8.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예정 ☞ 한겨레 보도와 같은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
- 이원화에 관한 보도 및 법관사회 내 논의가 고법부장 승진제도 유지를 통한 대법원장의 인사권 강화 및 이로 인한 사법부 관료화 심화에 대한 비판으로 모아질 경우 대법원장님의 임기 말 리더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II. 법관인사 이원화 시행 경과

1. 2010년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 발표

- 2010. 9. 27. ‘고법판사·지법판사 이원화 방안’ 코트넷 게시
 -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위하여 일응의 방안을 제시한 것임

▶ 이원화의 필요성

- ①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시행되면 『지방법원 배석판사 ⇒ 단독판사 ⇒ 고등법원 배석판사



⇒ 지방법원 부장판사 ⇒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보직이동의 인사패턴은 변화가 불가피함

② 기수별 인원의 증가에 따라 **고법부장 보임비율 하락** ⇨ 법관의 **중도 사직 증가** 예상

③ 연수원 29기 이후 기수별 인원 급증 ⇨ 고법배석 진입 적체 ⇨ **고법배석 근무기간 장기화** 곤란 ⇨ **고등법원 재판역량 약화**

▶ 이원화 방안

- **법관을 고법판사와 지법판사로 이원화** ⇨ 고법판사로 보임되면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에서만 근무
- 이행기 완료시점, 즉 고법배석 공석이 모두 고법판사로 채워지게 된 이후에는 연수원 기수 등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법조인을 대상으로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에 대하여 고법판사를 선발함
- 이행기 완료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인원의 고법판사를 보임함** ⇨ 기수별·연도별 보임비율 균형 유지
- 일정 기수까지는 현행 고법부장 보임 방식 유지

▶ 전보인사 등

- 고법판사에 대하여 전국 단위의 전보인사 시행 ⇨ 10년 중 2~3년
- 고법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10년) 동안 지법판사로 전보될 수 없음
- 이원화 완성 이후에는 지방법원장, 지방법원 수석부장, 지원장은 원칙적으로 지법판사 중에서 보임함
- 사법연수원과 법원행정처 등에는 고법판사와 지법판사를 고루 배치

■ 2010. 12. 7. '법관인사 이원화 시행방안' 코트넷 게시

- 확정된 방안을 게시한 것임
- 고법부장 제도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음

▶ 고법판사의 지원

- 2011년에는 23기 ~ 25기를 대상으로 함
- 2012년 이후는 **매년 3개 기수**에 대하여 **순차로** 지원 기회를 부여함

▶ 고법판사의 보임

- 지원자 중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임함
- 가급적 기수별, 연도별 보임 비율 및 인원의 균형을 유지함
- 고등법원이 고법판사로 모두 충원될 때까지는 종전의 고법배석 보임을 병행함



2.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른 2011년 ~ 2015년 정기인사 결과

▣ 연도별 고법판사 보임규모

구분	23	24	25	26	27	28	29	합계
2011	6	6	8					20
2012		5	9	10				24
2013			4	10	10			24
2014				6	9	8		23
2015					4	13	6	23
합계	6	11	21	26	23	21	6	114
현원	4	11	20	24	23	20	6	108

* 사직 및 지방법원 복귀 6명 : 23기 2명, 25기 1명, 26기 2명, 28기 1명

▣ 2015년 정기인사 후 이원화 이행 현황

구분	고법부장	고법판사			고법배석	
		전체공석	보임	보임비율		
서울고법	58	118	91	74.4%	27	
지방권	서울고춘천	1	3	0	0%	3
	대전고법	7	16	3	18.8%	13
	대구고법	5	11	3	27.3%	8
	부산고법	11	23	6	26.1%	17
	광주고법	7	15	2	13.3%	13
	특허법원	4	8	0	0%	8
합계	93	194	105	53.6%	89	

* 지방권 고등법원은 원외재판부 포함

* 휴직, 겸임 등 고법판사(3인)는 제외

3. 2015년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 발표

▣ 논의의 배경

- 법관인사 이원화의 최초 시행 당시에는 기본적인 운영 방향만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음 ⇨ 고법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의 실제 운용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법판사의 보임과 전보, 법관인사 이원화와 고법판사 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 등 다양한 측면을 법관 인사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5. 11. 13. '법관인사 이원화와 고법판사 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 코트넷 게시

▶ 고법판사의 전보

- 2016년 정기인사 때부터 고법판사의 타 고등법원 전보 시행
 - 전국 고등법원 재판의 균질한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고법판사의 인사이동을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일반의 인사이동과 균형을 맞추기 위함

▶ 고법판사의 특수보직 보임

-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보직에 대하여 고법판사를 점진적으로 보임해 나갈 예정
 - 현재 제도 시행 후 약 5년이 경과하였고, 고법판사도 약 110명에 이르고 있어, 법관 인력의 적절한 활용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음

▶ 고법판사의 지방법원 복귀

- 고법판사로 5년 이상 근무한 법관이 지방법원으로서의 복귀를 희망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심사하여 개별적으로 지방법원 복귀 허가
 - 현재의 고법판사들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운영 경험이 축적되거나 안정화된 모습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보임되었고, 자신의 적성이 고등법원 재판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희망에 따른 지방법원에의 복귀를 어느 정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고등법원 재판부 구성 및 고법판사 보임

- 법관인사 이원화를 조기에 완성하기보다는 고법판사의 보임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 심급구조의 변경 및 개편, 고법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의 운영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법원의 이원화 체제를 빠른 속도로 완성할 경우, 그 이후에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구조적 개선방안을 채택하기가 어렵고, 뒤늦게 고등법원 재판부 구성이나 운영방식의 개선을 시도할 경우 법관 인사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이원화가 완성될 경우 고등법원에 진입할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후배 기수의 법관들에게 고등법원 재판을 담당할 기회를 부여
 - 고등법원에 보다 폭넓은 기수의 법관들을 진입시켜 다양한 가치관과 시각을 그 재판에 반영

▶ 고법부장 직위의 운영 문제

- 고법판사 인원이 크게 늘어난 25기 이하가 해당 기수가 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현 단계에서는 단정적으로 방침 설정을 하는 것이 부적절



4. 2016년 정기인사 결과

가. 고법부장 보임

- 연수원 21기 ~ 23기 17명 고법부장 보임
 - 21기 1명, 22기 7명, 23기 9명(7명은 지법부장, 2명은 고법판사)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첫 시행 대상인 23기에 대하여 지법부장과 고법판사를 통틀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고법부장 보임
 - 고법판사 4명 중 2명만 고법부장 보임 ⇨ 나머지 2명은 1명 사직, 1명 잔류

나. 고법판사 신규보임 및 전보

- 고법판사 신규보임
 - 28기 ~ 30기 법관 중에서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2015년보다 10명이 적은 13명을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
 - 연도별 고법판사 보임규모

구분	23	24	25	26	27	28	29	30	합계
2011	6	6	8						20
2012		5	9	10					24
2013			4	10	10				24
2014				6	9	8			23
2015					4	13	6		23
2016						3	8	2	13
합계	6	11	21	26	23	24	14	2	127
현원	1	11	20	23	21	21	14	2	113

* 고법부장 보임 2명 : 23기 2명

* 사직 및 지방법원 복귀 12명 : 23기 3명, 25기 1명, 26기 3명, 27기 2명, 28기 3명

■ 고법판사 전보

- 지방권 고등법원 전보 시행 : 25기 5명, 26기 1명에 대하여 고법판사의 지방권 고등법원 전보를 처음으로 시행함
- 비재판보직 보임 확대 : 고법판사 2명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로 각각 발령하고, 고법판사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분석심의회 상근위원으로 선발

다. 2016년 정기인사 후 이원화 이행 현황

- 고법판사 보임비율을 2015년 수준에서 유지함

구분	고법부장	고법판사			고법배석	
		전체공석	보임	보임비율		
서울고법	60	120	88	73.3%	32	
지방권	서울고출천	1	3	0	0%	3
	대전고법	7	16	4	25%	12
	대구고법	6	11	2	18.2%	9
	부산고법	12	23	8	34.8%	15
	광주고법	8	17	4	23.5%	13
	특허법원	5	10	2	20%	8
합계	99	200	108	54%	92	

* 지방권 고등법원은 원외재판부 포함

* 휴직, 겸임(행정처), 정원외(연수원) 등 고법판사(5인)는 제외

Ⅲ. 2016년 정기인사 후 일부 언론의 반응

1. 개요

- 연수원 23기 고법판사 4명 중 2명을 고법부장으로 선발한 것에 주목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연수원 25기 이하 고법판사에 대하여도 고법부장 선발제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이해
- 고법부장 선발제도 유지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통해 법원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의도로 의심 ⇨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이 하급심으로까지 널리 퍼질 것을 경계

2. 구체적 내용

▣ 2016. 2. 25.자 한겨레 - 아침 햇발(여○○ 기자)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에 따라 고법판사와 지법판사로 진로를 나눈 연수원 23



기 가운데 고법판사 2명이 고법부장으로 선발됨

- 애초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고법부장 선발제도의 폐지가 전제되어 있었음
⇒ 판사들을 승진과 탈락으로 나눈 이번 인사는 법관인사 이원화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메시지가 됨
- 고법부장 선발제도 유지는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통해 법원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 할 것임. 법원 인사는 낮은 편향을 하급심에 강제하는 장치임 ⇒ 애초 약속대로 고법부장 선발제도를 없애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위원회나 법원장 등에게 분산하는 결단이 필요함

■ 2016. 2. 25.자 the L(머니투데이)

- 대법원은 2010년 지법부장이 고법부장으로 이동하는 인사를 없애고, 이를 위해 2011년 정기인사부터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함
- 그러나 2016년 정기인사에서 연수원 23기 고법판사 중 일부가 처음으로 고법부장으로 선발됨
- 『고법판사 ⇒ 고법부장』라는 형태의 인사가 최초로 이뤄졌음에도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고법판사를 앞으로도 계속 고법부장으로 선발할 예정인지, 고법부장 직위를 유지할 것인지도 밝히지 않음 ⇒ 인사에 관한 방침과 현안을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높아질 것임

■ 2016. 3. 10.자 법률신문 - 취재수첩(이○○ 기자)

- 2016년 정기인사에서 연수원 23기 고법판사 중 일부가 고법부장으로 선발됨
⇒ 고법부장 선발이 연수원 25기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 ⇒ 고법판사 중 일부만 고법부장으로 선발되면 대등재판부의 청사진이 실현될 수 없음 ⇒ 고법판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음
- 고법부장 선발제도 유지 움직임에 대하여, 판사들은 대법원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잊고 인사권으로 조직을 통제, 관리하는 손쉬운 방법을 고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내놓고 있음



IV. 언론 등 대응방안

1. 개요

- ▣ 보도 前 : 사전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대응논리 마련
- ▣ 보도 後
 - ① 관심 있는 메이저 언론에 대응논리 전달 ⇨ 기사 확산 방지
 - ② 한겨레 및 같은 성향 매체의 분리·고립
 - ③ 법관사회 동요 방지

2. 기본 방향

- ▣ 기존의 공식 입장은 견지하면서(2015. 11. 13. 차장님 공지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대론의 입장을 비공식/간접적으로 전달

-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와 연계한 고법부장 직위의 운영 문제는 고법관사 인원이 크게 늘어난 25기 이하가 해당 기수가 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방침 설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 이원화 제도의 성과를 계속적으로 분석하여 법관인사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등법원 재판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

- ▣ 인사제도 측면과 동시에 재판제도 측면에서 함께 접근
 - 법관 인사제도는 궁극적으로 충실한 재판과 바람직한 심급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가 됨으로써 제도로서의 지속성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 함
- ▣ 논의 자체의 봉쇄보다는 논의가 대법원장님에 대한 공격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3. 구체적 계획

가. 보도 前 : 예상 쟁점에 대한 대응 논리 수립



▣ 예상 쟁점

- 이원화의 진행 방향(폐지 여부)
- 고법부장 직위 유지 여부
- 고법부장 직위 운영방식(승진제 여부)
 - 23기 일부를 승진시키고 일부를 탈락시킨 이유
 - 25기 이후 운영방식

▣ 대응 논리 : 공식적 입장 + 비공식적 대응논리 함께 작성

- 비공식적 대응논리가 대법원의 입장으로 제3자(특히 일선 판사들)에게 전파되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필요

나. 보도 後

▣ 대응 방향 : 메이저 언론과 한겨레 및 같은 성향의 매체 분리 대응

- 메이저 언론 ⇨ 관심 있는 언론에 대응논리 전달을 통한 기사 확산 방지
- 한겨레 등 ⇨ 메이저 언론으로의 확산 방지를 통한 분리, 고립

▣ 보도 직후 ⇨ 공보관을 통한 메이저 언론의 분위기 수집

- 추가적으로 고법판사들의 반응을 파악할 필요도 있음

▣ 대응이 필요한 언론사 선별 ⇨ 실국장들의 개별 접촉

- 기 확정된 실국장별 언론사 오찬 일정 참고
 - 월요일 : 기초실장 + MBC(오찬), 등기국장·전정국장·지원총괄 + 조선(만찬)
 - 주중 : 공보관 + 경향(오찬)

- 보도지연 시 법원장 간담회(木,金) 때문에 일정 수립에 지장 예상

▣ 향후 법률신문 등 중립적 매체를 통한 다른 논리의 보도 검토

- 조선, 동아 등 보수매체에서 한겨레 등의 논리와 반대되는 옹호론을 펼칠 경우 진영 간 다툼으로 비화 우려가 있으므로 부작용 예상됨

다. 법관사회 동요 방지



■ 설명 기초

- 뒤에서 살펴 볼 대응 논리 중 '공식적 설명' 부분 참조

■ 설명 방법

○ 법원장 통해 전파

(내용)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 법원장들께 구두로 설명 후 공식·비공식 설명자료 제공

⇒ 법원장들은 간담회 결과를 소속 법원 판사들에게 알리는 기회에 함께 설명

(+) 공식적 설명 내용 이외에 비공식적 설명 내용도 법원장들로 하여금 구두로 전파하도록 할 수 있음 / 법원행정처가 전면예 나셔서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및 고법부장 선발제도를 이슈화 시키는 모습 피할 수 있음

(-) 법원장들이 소속 법원 판사들에게 비공식 설명자료 내용을 전파할 경우,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미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

○ 코트넷 공지

(+) 정제된 언어로 모든 법관들에게 설명 가능

(-) 아래에서 살펴 볼 대응 논리 중 공식적 설명 내용만 공지 가능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및 고법부장 선발제도가 법관사회의 화두로 급부상 우려

○ 인사모 토론회 참가

(내용)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임인 인사모에서 2016. 4. 8.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예정 ⇒ 인사심의관 및 사법정책심의관이 참가하여 입장 설명

(+) 법관사회 내 사법행정 비판세력과 소통의 기회 / 인사모 논의 내용 및 분위기 파악

(-) 인사모 측 발표자와 대립하는 입장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우려가 있음 / 인사모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름으로 위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것임에도 행정처가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

○ 법관사회 여론 주도층 개별 접촉

(+) 진솔한 대화를 통해 충분한 설명 가능

(-) 신○○ 대법관 재판개입 논란 당시 행정처 심의관들이 일선 법관들에게 1:1로 설명을 시도하다 언론 사전노출로 중단한 사태 재발 우려 배제할 수 없음



(-) 행정처 심의관들이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함 /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

V. 구체적 대응 논리

1. 공식적 설명

(1) 현재의 상황은 작년의 공지내용은 물론, 최초 이원화 제도 도입 당시의 공지와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음

- 대법원장이 고법부장 선발 제도 유지 등 인사권을 통하여 법원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일부의 의심은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를 모색하려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당초 취지를 오해한 것이거나 근거 없는 우려임
- 23, 24기의 고법부장 보임, 고법판사의 타 권역 고등법원 전보, 일정 기간 이후 본인의 선택에 따른 지방법원 복귀 허용 등은 모두 제도 도입 초기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방안을 시행한 것에 지나지 않음

(2) 고법부장 선발제도 유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

- 2010년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당시에도 고법부장 직위 유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었고, 이를 공식적으로 공표한 바도 없음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연수원 25기 이하에 대하여 ‘현행 방식의 고법부장 보임’(☞ 일정 기수를 대상으로 한 절대적 선발인사 방식)이 없어지게 된다고 공표한 것일 뿐임
- 연수원 25기 이하에 대하여 고법부장 직위를 유지할 것인지, 만약 유지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은 현재도 결정된 바 없음
 - 현재의 패턴에 의할 때 연수원 25기가 고법부장 보임 대상이 되는 2018년 정기인사 이후에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 現 대법원장님의 임기가 2017. 9. 만료되므로 현 단계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적절하지도 않음
- 연수원 23기, 24기에 대한 고법부장 보임은 법관인사 이원화 도입 당시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 ⇨ 연수원 25기 이하에 대한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은 비약임

- 연수원 23기는 1회, 24기는 2회밖에 고법판사 지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 지방 법원에서 근무하는 부장들에게도 고법부장 보임 기회 부여 필요
- 이와외 균형상, 연수원 23기, 24기 고법판사의 경우에도 고등법원 재판장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고법부장 보임이 불가피

(3) 법관인사 이원화는 이행속도를 늦춘 것일 뿐 폐지하기로 한 것이 아님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조 인력의 배치를 통한 고등법원 업무 경감, 항소심의 사후심화 추진, 고법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의 실질적 합의체로서의 운영 등이 병행되어야 하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거나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임 ⇨ 이원화 이행속도 조절 필요

- 고법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 재판연구원을 2명밖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고, 그마저도 법조경력 1~2년차에 불과하여 재판업무 보조 효과가 크지 않으며, 항소심의 사후심화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고, 고법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의 운영 방안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
- 심급구조의 변경 및 개편, 고법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의 운영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법원의 이원화 체제를 빠른 속도로 완성할 경우, 그 이후에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구조적 개선방안을 채택하기가 어렵고, 뒤늦게 고등법원 재판부 구성이나 운영방식의 개선을 시도할 경우 법관 인사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이원화 이행속도를 늦춤으로써 다음과 같은 장점도 있음

- 이원화가 완성될 경우 고등법원에 진입할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후배 기수의 법관들에게 고등법원 재판을 담당할 기회를 부여**
 - ※ 서울고법의 경우 고법배석 공석이 2015년 27개에서 2016년 32개로 증가 ⇨ 31기 4명, 32기 10명, 33기 4명 서울고법 배석 진입
- 고등법원에 보다 폭넓은 기수의 법관들을 진입시켜 다양한 가치관과 시각을 그 재판에 반영할 수 있음

(4)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운영 방향은 인사권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임

- 법관 인사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재판의 질을 높이고 심급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법관들 스스로만을 위한 제도 변경에 그쳐서는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더러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도 없음
- 법관인사 이원화는 재판제도, 그 중 최후의 사실심인 항소심 재판제도의 운영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그 성공적 운영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재판을 받는 국민(및 그 대리인)이 얼마나 만족하고,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실한 검토도 필요함
- 고법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의 운영 성과, 이원화가 1심 재판역량에 미친 영향 및 앞으로 개개의 법관의 재판역량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운영 방향을 확정해야 할 것임

2. 비공식적 설명

가. 고법부장 제도

① 고법부장 직위 유지 여부

- 고법부장 직위의 유지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나,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① 우리 고등법원 재판은 **사실심**으로서 사후심적 운영으로의 이행이 더딘 상황임 ⇨ 고등법원이 적극적인 증거조사와 사실심리를 실시하는 이상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기능적 역할 분장(재판장은 사건 전체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서 절차 진행을 주도하고, 주심판사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사건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면서 재판장의 사건 진행을 돕는 형태)의 관점에서 고정된 재판장을 담당할 고법부장 직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 ② 비교법적으로는 고등법원 재판이 사실심 형태로 이루어지는 국가들에서는 고정된 재판장으로서 고법부장 직위가 존재함(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
 - ③ 현행 법원조직법상으로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도록 규정되어 있음 ⇨ 법원조



직법을 개정하면 될 것이나, 근본적으로 항소심의 구조와 직결되어 있어 법원조직 법만의 개정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며, 고등법원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에서의 부장 판사 제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

- ④ 고법부장 직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취업제한 등과 연관되어 있어 그 적용 범위의 설정 등 여러 가지 선결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고법부장 직위를 폐지 하면 재산공개, 취업제한 등의 대상자를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

② 고법부장 선발 유지 여부

○ 연수원 25기 이하에 대하여는 고법부장 직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 고법부장 보임방식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고, 아직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법관인사 이원화의 성과를 분석하고 장래 법관의 인적구성 등을 지켜보면서 법관인사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재판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나, 다만 다음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① 고등법원은 사실심의 최종심에 해당하는바, 재판장인 고법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1심과 2심을 불문하고 가장 경륜이 있고 우수한 법관을 선발할 필요성이 존재함
- ② 고법판사들을 원칙적으로 고법부장으로 보임할 경우 고법판사들의 근무충실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지법부장들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근무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③ 현재와 같이 이원화 이행기에 선발된 고법판사들은 선발기준이 다소 완화된 상태에서 고법판사 보임기회를 독점함 → 이들을 특별한 심사 없이 대부분 고법부장으로 보임하면 고법부장 보임기회마저 거의 독점하게 됨 → 고등법원 공석이 적어 이행기 이후 세대는 고등법원 근무기회를 갖기 매우 어려움 → 이행기 이후 세대 법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질 수 있음

○ 만약 고법부장 직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종래 방식에 의한 고법부장 보임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전체 법관이 고루 자긍심을 유지하면서 평생 법관으로 재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고법부장으로 보임된 법관은 고등법원에서 주로 재판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지방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 등 주요 보직은 점진적으로 사법행정 역량을 갖춘 지법



부장에게 넘김으로써 고법부장 보임의 승진제적 요소를 완화

- 한편, 연수원 23기, 24기 고법판사의 경우에는 일단 일부만 고법부장으로 보임하는 것이 부득이함
 - 23기, 24기 지법부장은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법부장 보임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음 ⇨ 23기, 24기 고법판사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고법부장 보임하는 것이 형평에 맞음
 - 23기, 24기 고법판사에 대하여는 지법부장 출신 고법부장과 동일한 재판장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행 법원조직법상으로는 고법부장으로 보임하지 않으면 고등법원 재판장을 맡을 수 없음 ⇨ 고법판사를 고법부장으로 보임하되, 고등법원 재판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과 적성을 심사하여야 함
 - 한편, 통상 기수당 3차례 정도에 걸쳐 고법부장 보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1차례 보임 심사만을 한 23기는 아직 고법부장 보임 기회가 2회 남아 있음 ⇨ 고법판사 중 일부만 고법부장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님

나.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 이원화 이행속도를 늦추기로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임

① 대등재판부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견해가 있음

- 대등재판부에 기존 배석판사와 달리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경륜 있는 고법판사가 배치되고 재판부당 재판연구원 2명씩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음 vs 일반재판부에는 법조경력 12~14년의 법관과 재판연구원 1명씩이 배치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대등재판부의 성과가 일반재판부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음

② 대등재판부가 단독재판화 된다는 우려가 있음

- 재판장에 대한 주심배당이 이루어져 재판장이 가 주심 사건에 집중하게 됨 ⇨ 재판장의 나, 다 주심 사건에 대한 장악력이 감소하고, 나, 다 주심은 가 주심 사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내용임



③ 인력배치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견해가 있음

-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우수 지법부장급 자원과 재판연구원을 고등법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 인하여 **1심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견해임. 반면 지금은 1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④ 1, 2심 순환을 통한 법관의 성장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견해가 있음

- 이원화 이전에는 거의 모든 법관이 1, 2심을 고루 경험하고 1심 합의부장 경험이 풍부한 법관이 고등법원 재판장이 되어 고등법원 재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1, 2심의 인사가 분리되어 **1, 2심 재판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는 견해임



정기인사 정책 결정 관련 검토 사항

2018. 7. 31.

I. 법원장의 '고등법원 복귀' 관련 정책 결정 필요 사항

1. 복귀 법원장의 고등법원 사무분담

가. 서울고법 복귀 재판장 사무분담 현황

▣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배려책 시행 중

- [사무분담] 형사 v. 행정, 민사(항고) ⇨ 행정, 민사(항고)
- [재판부] 고법판사 재판부 v. 일반재판부 ⇨ 일반재판부

복귀연도	성명	1차/2차	사무분담	고법판사/일반
2012	조○○	1차	행정부	일반재판부
	박○○	1차	형사부	일반재판부
2013	조○○	1차	행정부	일반재판부
	심○○	1차	민사부(항고)	일반재판부
2014	이○○	1차	민사부	일반재판부
	유○○	1차	민사부	일반재판부
	곽○○	1차	행정부	일반재판부
	지○○	1차	행정부	일반재판부
2015	조○○	2차	행정부	고법판사 재판부
	최○○	1차	형사부	일반재판부
	최○○	1차	민사부(항고)	일반재판부
	황○○	1차	형사부	고법판사 재판부
	성○○	1차	행정부	고법판사 재판부

나. 가능한 방안

- ▣ [제1안]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배려를 하지 않음



- 복귀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일반 재판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부와 고법판사 재판부** 등 업무부담 많은 재판부에 배치
- (+) 2차 복귀 재판장의 1심으로의 복귀 유도
- (-) 복귀 재판장의 정서적 반감, 복귀 재판장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고법판사 재판부로의 복귀는 무리

▣ [제2안] 현행과 같이 사무분담을 통한 배려 유지

- 현재와 같이 복귀 재판장을 업무부담 적은 행정부와 민사(항고)부의 일반재판부 중심으로 배치
- (-) 다수의 복귀 재판장들이 특정 사무분담을 독점하면, 일반 재판장은 다양한 사무분담을 경험할 기회를 상실함
- (-) 2차 복귀 재판장의 1심 복귀에 대한 유인 감소

▣ [제3안] 배당비율 축소를 통한 업무부담 경감

- 복귀 재판장에 대한 배당 비율 축소
- (-) 일반 재판장의 배당비율 증가로 인한 불만이 심해짐
- (-) 2차 복귀 재판장의 1심 복귀에 대한 유인이 사라짐 ⇨ 고등법원 재판장의 상당수가 복귀 재판장으로 구성되어 조직이 정체됨

다. 검토: 제1안과 제2안의 절충 ⇨ **일반재판부 우선 배치만 유지**

▣ 고법판사/일반 중 일반재판부 우선 배치

▣ 행정, 민사(항고) 등 사무분담 배려는 하지 않음

- 민사, 형사, 행정 중 담당하는 재판업무를 결정할 때는 복귀 재판장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
- 법원장 보임 전에 담당할 사무분담 등을 사무분담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2. 1차 복귀 법원장의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임

가. 현행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임 방식의 문제점

▣ 재임 기간 초단기화로 사법행정의 연속성 확보 곤란

- 2004년 이후 서울고법 수석부장 평균 재직기간 5.7개월에 불과

▣ 수석부장 보직에 대한 열망 없고, 적극적 업무수행 의사 기대 어려움

- 당연직으로 맡는 보직 ⇨ 법원장 공석만 기다리며 소극적 업무 수행

▣ 복귀 법원장과의 관계에서 역할 및 위상 정립에 어려움

- 위계적 조직문화에서 사법행정의 2인자로서 위상 정립 어려움

나. 수석부장 보임 개선방안

▣ [제1안] 1차 복귀 법원장 중에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책임자 발탁

- 1차 복귀 법원장 중에서 보임 ⇨ 법원장 근무로 얻은 사법행정 경험과 식견의 사장 방지 + 다른 부장판사와 관계 설정 용이
- 다수의 복귀 법원장 중 2차 법원장 보임될만한 자질 갖춘 인원 발탁 ⇨ 역량 있는 고위 법관들의 새로운 인사경로 제시로 근무의욕 고취
- 사실상 고등법원 부원장으로서 지법원장에 준하는 비서관 등 신분적·경제적 대우 + 고등법원장 행정권한 일부 분담 + 2년의 임기 ⇨ 능동적 업무토대 마련

▣ [제2안] 신임 지방법원장 보임 대상자 중에서 보임

- 수석부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법원장 보임

▣ [제3안] 법원장 보임 이전 고법부장 중에서 보임

- 상서열자 또는 법원장 보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고법부장을 수석부장으로 보임하되, 수석부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법원장 보임



다. 단계적 시행방안 (제1안에 의할 때)

▣ [1단계] 서울고법에서 2016. 2. 정기인사 시 첫 시행

● 2016년에는 14기, 2018년에는 15기 내외에서 보임될 가능성 큼

● 서울고등 수석부장판사 보임 대상자

- 2016년 1차 복귀 법원장 (기수, 고법부장 보임일, 연령 順, 이하 같음)

연번	성명	기수	직위	법원장 보임일	비고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 이력
1	김○○	13	서울행정법원장	2013.11.14	남부(13.11) - 서울행정(15.02)	13.02 - 13.11
2	여○○	13	서울가정법원장	2014.02.13	의정부(14.02) - 서울가정(15.02)	13.11 - 14.02
3	성○○	14	수원지방법원장	2014.02.13		
4	조○○	14	대구지방법원장	2014.02.13		
5	성○○	14	춘천지방법원장	2014.02.13		
6	박○○	14	전주지방법원장	2014.02.13		
7	조○○	14	대전지방법원장	2014.02.13		
8	최○○	14	울산지방법원장	2014.02.13		
9	강○○	14	부산지방법원장	2014.02.13	창원(14.02) - 부산(15.02)	
10	김○○	14	제주지방법원장	2014.02.13		
11	조○○	14	청주지방법원장	2014.02.13		

※ 회색 음영은 2014년 법원장에 보임되었으나 2015년 전보되어 2016년 재판부 복귀 가능한 법관임

▣ [2단계] 서울고법 성과 분석 ⇨ 지방권 고법으로 확대 실시 여부 결정

<고법 수석부장 보임 개선 관련 부정적 견해 및 대응 논리>

부정적 견해	대응 논리
▶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복귀 법원장들이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데 제도 실시의 근본취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행정 식견 높은 복귀 법원장의 역량 발휘 기회 지속적으로 제공 ⇨ 평생법관제 정착에 더욱 기여하는 인사시스템 될 수 있음 ◆ 대다수 복귀 법원장들은 본래 취지에 따라 재판업무 담당
▶ 고등원장과 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 업무 분담 및 관계 설정에 어려움 발생하여, 불필요한 갈등 요인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에는 행정처에서 구체적 사법행정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 가능 ◆ 중장기적으로는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고등원장으로 보임되는 인사패턴 확립되어, 오히려 조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발탁성 인사 보직 추가로, 법관의 관료화 비판 제기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부장판사는 어디까지나 '보직' 개념으로 고등부장보다 고위직 아님 ◆ 소수의 복귀 법원장 중 1명 발탁하는 것으로,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한 폐단 없을 것



3. 2차 법원장의 '지방권 고등법원' 복귀

가. 필요성

- ▣ 복귀 재판장의 서울고법 집중 심화 ⇨ 신진 고법부장의 서울권 진입 적체
 - 복귀 재판장 중 지역 거점 법관이 아닌 인원은 2023년 이후 약 30명
⇨ 서울고법 전체 재판장 공석의 약 45%
 - 초임 고법부장이 지방권으로 배치된 이후 서울권으로 전보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현재의 1~2년에서 향후 3~4년으로 증가될 우려

나. 문제점

- ▣ 복귀 법원장의 심리적 상실감 + 지방권 근무기간 장기화
 - 특히 직전에 지방권에서 법원장으로 근무한 경우가 문제됨

다. 시행 방안

- ▣ 2차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하는 시점에서 지방권 고등법원으로 전보하여 2년 근무한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복귀
 - 개선안에 의할 때 2차 복귀 재판장의 서울권/지방권 근무 인원 예측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권	9	14	14	15	16	14	15	20	21	22	23
지방권	1	4	6	8	10	14	16	13	13	12	11

- 매년 7~11명 정도의 인원이 서울권에서 지방권으로 이전되는 효과 발생
- 2차 재판부 복귀 시점에서 지방권 고등법원으로 전보하는 것이 서울권 고등법원의 공석 확보에 가장 유리 ⇨ 사직인원 등을 고려할 경우, 지방권 전보시점을 늦출수록 서울권 공석확보 효과 떨어짐
- ▣ [보완책] 지방권에서 2차 법원장으로 근무하고 복귀한 재판장의 경우

- 지방권에서 근무한 2차 법원장을 다시 지방권에 배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예: 박○○ 대전고등법원장, 강○○ 특허법원장)
- [보완책] 일단 서울고법이나 수원고법으로 복귀하여 2년 내외 근무 이후 지방권 전보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 검토
 - 2차 법원장의 지방법원 복귀가 활성화되어 서울고등법원 공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권 고등법원 전보를 실시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음
 - 이 경우 “수원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인사패턴 고려 가능

라. 시행시기

- **지방권 고등법원 배치를 즉시 시행하기보다는, 2~3년 정도 2차 법원장의 지방법원 복귀 추이 등을 지켜본 이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함**
 - 아직 2차 법원장의 재판부 복귀가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2차 법원장의 지방법원 복귀 등이 원활하게 정착될 경우 2차 복귀 재판장을 지방권 고등법원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음
 - 2018년까지는 서울고등법원의 복귀 재판장 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음 ⇨ 그 이전까지는 2차 복귀 재판장의 지방법원 복귀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 조성 집중할 필요 있음

II. 2차 법원장의 지방법원 복귀 방안

1. [방안①] 통상적인 지방법원 복귀 방안

가. 필요성

▣ 2차 법원장 고등법원 복귀의 문제점

- 과중한 업무부담, 업무의욕 저하 가능성
- 후임 고등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에 부담으로 작용
- 고법부장 공석 축소 효과
 - 2022년 약 20명의 2차 복귀 재판장이 존재함

▣ 1심 강화에 기여

▣ 다만 지방법원 복귀에 대한 선호가 높지 않은 점이 극복되어야 함

나. 사무분담

① 시군법원 판사

박○○ 前 사법연수원장 사례
- 구미시법원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음

- (+) 본원 사무분담, 의전 문제 해소
- (-) 출퇴근 여건 열악
 - 서울에서 출퇴근 가능 시군법원: 용인, 오산, 광주, 광명, 김포, 파주

② 소액단독

- (+) 전담법관과 유사하게 고분쟁성 집중심리사건 처리 가능
- (-) 고분쟁성 집중심리사건만을 재배당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배치 가능한 법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서울 및 수도권 법원 소액재판부 수 및 전담법관 수>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재판부	19.5	5	6	4	4	2	5	3
전담법관	2	1	1					

③ 가사소년 단독

- (+) 가정법원의 전문성과 후견적 지위를 강화
- (-) 가정법원의 규모가 작아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에 부담

④ 조정단독

⑤ 민사 중액/고액 단독, 형사단독

- (+) 복귀 재판장의 역량 발휘 및 직업적 만족도 유지 가능
- (-) 낮은 기수 법관들의 불만 가능성

⑥ 합의부장(항소부장)

- (+) 중요한 합의사건을 처리 ⇨ 1심 강화의 목적에 가장 부합, 복귀 재판장의 역량 발휘 가능, 직업적 만족도 유지 가능
- (-) 합의부장 보임 적체 문제가 악화됨

⑦ 사법연수원 교수

- (-) 풍부한 재판경험과 교수로서의 강의 능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님

다. 인사경로 설정 방식

1) 가능한 견해

▣ [제1안] 탄력적 인사경로 설정 방안 (고법 부장판사 + 1심 복귀)

- 최종 보직을 1심 단독판사로 설정하되, 재판부 복귀 후 최종 보직에 이를 때까지는, 인사상황과 본인의 선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 1심 합의부장(항소부장), 1심 단독판사, 사법연수



원 교수 등으로 탄력적으로 보임하는 방안

▣ [2안] 원칙적 1심 복귀 방안

- 2차 법원장 이후 원칙적으로 1심 단독판사로 바로 보임

2) 검토의견

▣ 단기적으로 제1안을 시행하되, 장기적으로 제2안 시행

- 재판부 복귀 법원장의 희망을 존중할 필요

☑ 탄력적인 인사경로의 예시

- ▶ 2차 법원장 + 고등법원 부장판사 2년 + 1심 소액 판사 3-4년
- ▶ 2차 법원장 + 지방법원 합의부장(항소부장) 2년 + 1심 소액 판사 3-4년
- ▶ 2차 법원장 + 사법연수원 교수 1년 + 소액 판사(또는 시.군법원 판사) 등 4~5년
- ▶ 2차 법원장 + 소액 판사(또는 시.군법원 판사) 등 5~6년

라. 고법부장 처우

1) 개관

▣ 예우

- 전용차량 지급, 직책수행경비/특정업무경비 추가 지급

▣ 의무 (공직자윤리법)

- 재산공개의무, 주식거래내역 신고의무,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무
- 퇴직 후 3년간 대규모 로펌 취업 제한

2) 가능한 방안

▣ [제1안] 복귀 전과 동일하게 고법부장 예우를 받고 의무를 부담함

- (-) 고법부장의 사실상 직급화, 1심 장기 재직 법관과의 형평성 시비

▣ [제2안] 복귀와 동시에 고법부장 처우를 중단함

- (-) 2차 법원장의 정서적 박탈감 강화 ⇨ 평생법관제 정착에 저해
- (-) 공직자윤리법 잠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 [제3안] 일정 기간 동안 처우를 유지하는 방안

- 일정 기간(예: 로펌 취업 제한 기간 3년) 동안 고법부장 처우 유지
- 복귀 후 3년 내에 사직 시, 사직 후 3년간 대규모 로펌 취업이 제한됨

▣ [제4안] 복귀와 동시에 예우를 중단하되, 예산상 지원 실시

- 전용차량 지급의 예우는 중단하되, 고법부장 수준의 직책수행경비 등 예산상 지원을 실시
- 고법부장으로서의 의무는 일정 기간(3년) 유지하는 방안 고려 가능

3) 검토의견 ⇨ 처우 유지(제1안)

▣ 처우 중단 시 발생 가능한 2차 복귀 재판장의 반감 등 고려

⇨ 중요한 것은 평생법관제의 정착

- 고법부장 처우 유지에 대한 외부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

☑ 2015. 10. 8. 이상민 법사위원장 발언 (대법원 국정감사)

법원장 예우는 그대로 받더라도 1심에 전진배치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

- 장기적으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제2 내지 4안으로 변경 가능

2. [방안②] 원로판사 제도(한국형 시니어 저지 제도) 도입

가. 명칭 : “원로판사”

▣ 가능한 명칭들

- 예) 원로판사, 원로법관, 석좌판사, 석좌법관

▣ 판사 v. 법관 ⇨ 판사



▣ 원로 v. 석좌 ⇨ 원로

● 석좌의 개념

- 석좌제도(碩座制度) ⇨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 활동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학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 석좌교수(碩座教授) ⇨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한 기금으로 연구 활동을 하도록 대학에서 지정한 교수

- ‘석좌’의 경우 ‘외부에서 초빙되었다’는 이미지가 있음 ⇨ 시니어 저지로 임명될 법관들의 법관으로서의 오랜 경륜을 고려할 때 ‘원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

나. 대상 : 58세 이상 + 재직기간 30년 이상

▣ 원로판사의 주된 대상을 2차 법원장으로 설정

- [연령요건] 58세 ⇨ 2차 법원장을 마치는 최저 연령
- [재직기간] 30년 이상 ⇨ 평생 법관 근무를 통해 법원에 헌신하였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

☑ 장기재직한 지방법원 판사 포함 여부

▶ 가능한 견해

[제1안] 불포함 ⇨ 시니어저지 제도는 특혜. 지나친 확대는 자제

[제2안] 포함 ⇨ 형평성 고려. 법원에 오래 헌신한 판사에 대한 보상

▶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불포함

- 원로판사 제도는 고법부장 승진, 대법관 임명 등을 기반으로 한 현재의 법관 인사시스템 하에서 2차 법원장 등 고위 법관의 사직을 막고,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예외적 제도 ⇨ 적용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 있음
- 지방법원 판사를 제도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 지방법원 판사도 적용 대상에는 포함하되, 2차 법원장 역임 판사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운영함

다. 임용 방식

▣ 대상이 되는 법관의 지원 후 대법원장의 지명



- 판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임명절차 필요 없음
- 대상자의 ‘지원’을 받아서 **대법원장**이 원로판사로 ‘지명’
 - 임기 만료된 상고법원 판사, 2차 법원장 역임한 판사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지원’을 받는 절차가 필요함

라. 보수, 보조인력 및 업무량

■ 보수

- 기존의 보수체계 그대로 유지

■ 보조인력

- 비서 1인 지원 및 차량 제공
 - 기사 없이 차량만 제공하는 방안 검토
 - 차량 제공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교통보조비** 지급
- 재판연구원 ⇨ 담당 사무분담의 성격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소액사건 등 담당할 경우 재판연구원 지원 불필요

■ 업무량

- 원칙적으로 소속 법원장이 해당 법원의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
 - 각 사무분담의 특성에 맞추어서 업무량이 많지 않도록 조절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원로판사에 대한 배당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가능 ⇨ 단, 대외적으로 공표될 경우의 문제점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음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00조(원로판사에 대한 배당의 특례)

법원장은 원로판사에 대해서는 각급 법원의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건배당을 줄일 수 있다.

- 일반 판사 업무량의 1/2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미국은 1/4) ⇨ 단, 업무량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필요는 없음

마. 담당 사무분담

▣ 가능한 사무분담의 종류

- 2차 법원장의 지방법원 복귀 방안에서 검토한 내용과 동일

▣ 사무분담의 결정

- 원로판사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가 제도 성공의 열쇠 ⇨ 원로판사 임용 과정에서 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무분담 결정

바. 법관인사규칙 정비

▣ 법관인사규칙에 관련 규정 신설

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3(원로판사)

- ① 58세 이상으로 판사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원로판사로 보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한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원로판사를 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 필요성 ⇨ 복귀재판장이 합의부 재판장을 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사. 구체적인 인사발령 방안

▣ 인사발령 시기: 법원장, 고법부장 정기인사일

- 법원장, 고법부장 인사시기와 연동할 필요성
 - 지법부장 이하 법관과의 차별화 및 명예감 부여

▣ 인사발령문

- 법원장 ⇨ 원로판사 : 법원장 인사발령문에 포함
- 고법부장 ⇨ 원로판사 : 고법부장 인사발령문에 포함



III.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여부 및 설치 시 인사운용방안

1.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여부 및 설치시기

- 설치근거: 법원조직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 ⇨ ∴ 법률개정 不要
- 인천 관할 인구 및 추이 ⇨ 원외재판부 중 최대 규모로서 증가세
 - 관할인구 ⇨ 419만명으로, 원외재판부 중 최대인 창원(300만)보다 많음

	2015. 5. 기준 인구수	전년 대비 증감률
인천	2,968,273명	0.95%
부천	872,463명	-0.57%
김포	344,585명	0.90%
전체	4,185,321명	0.63% (높은 편)

- 설치 여부 검토 ⇨ 긍정적
 - [+] 관할인구 및 사건 수, 사법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 원외재판부와 비교할 때 설치 필요성 있음
 - [+] 수원고등법원 2019년 개원에 따른 형평성 및 상대적 박탈감 고려할 필요 있음
 - [+] 서울고법 비대화 및 과밀화 일부 해소
 - [+] 고법 부장판사 공석 추가 확보 가능성
 - [-] 도청 소재지가 아닌 곳에 원외재판부 설치한 前例 없음
 - [-] 울산, 의정부 등 유사 상황인 지역의 원외재판부 설치 요구 방어에 어려움 있음

- 설치시기 검토
 - [1안] 2016. 3. 1. 인천가정법원 개원과 동시에 설치하는 방안
 - ① 어차피 설치할 것이라면, 최대한 신속히 설치

- ② 인천가정법원 개원으로 인한 여유 공간 활용 ⇨ 소규모 공사만 하면 되므로 2016. 3. 개원에 큰 무리 없음
- [2안] 2019. 3. 1. 수원고등법원 개원과 동시에 설치하는 방안
 - ① 수원고법 설치와의 형평성이 원외재판부 설치의 주된 이유 중 하나라면, 수원고법 개원과 시기를 맞추면 족함
 - ② 2016년 설치할 경우 의정부에서 원외재판부 설치 요구가 거세질 것이 불가피함 ⇨ 항소심 구조개편 논의가 무르익기 전에 수도권에 너무 많은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 데 따른 부담

2. 2016년 조기개원 시 소요 재판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합계
소요 재판부 수 (접수사건 수 기준)	2.83	1.63	0.08	0.65	5.19

※ 접수사건수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인천 원외재판부에 미제사건이 없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임

▣ 개원시점에서는 3개 재판부로 출범하는 것이 적절

- 2016. 3. 1. 개원 시 기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본원에서 처리 ⇨ 상당 기간 동안 위 3개 재판부의 업무량은 과소할 것으로 예상
- 법원장 재판부를 포함할 경우 총 4개 재판부로 구성

▣ 2017년 정기인사 시점에서 사건접수건수, 미제건수 등을 고려하여 4개 재판부 또는 5개 재판부로 증부 검토

- 단기간에 사건처리부담이 가중될 경우 2016년 하반기에 재판부를 1개 증부하는 방안도 고려함

3. 인사운용방안

가. 법관 배치

1) 재판장

- [원칙적 보임대상] 지방권 근무를 마치고 서울권으로 전보되는 고법부장
 - 현재 서울고등법원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일부 고법부장들은 1년만에 서울고등법원으로 진입하고 있음 ⇨ 인천 원외재판부에 우선 배치
- 서울고등법원에 근무하는 18~19기 내외 고법부장 1명을 인천 원외재판부로 전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원활한 정착을 위한 선임부장의 역할 수행
- 2년 근무 이후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주심법관

- 고법판사
 - 인천 원외재판부 소속 고법판사는 별도로 선발하지 않음
 - 서울고등법원 본원의 고법배석 공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법판사의 인천 원외재판부 전보가 필요할 수 있으나, 2016년에는 필요성 없음
- 고법배석
 - 서울고등법원 본원과 같은 시점(법조경력 13~14년차)에 고법배석으로 진입 가능
 - 2016년의 경우 32기, 33기가 주된 대상이나, 현재 대부분 서울 관내 지법에 근무하며 이 중 경인권 역진을 희망한 법관은 별로 없음
 - 위의 연차 법관들만으로 인원 충원이 어려울 경우, 인천 원외재판부 진입연차를 낮추고(법조경력 11년 또는 10년 이상), 경인권 근무 단계에 있는 법관을 인천 원외재판부로 전보시키는 방안 고려 가능

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증감 처리

- 서울고등법원의 사건 처리 부담, 2016년 법관 증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 1개 내외 증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인천 원외재판부가 3개 재판부 형태로 출범할 경우,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적정한 감소폭이 문제될 수 있음

■ [1안] 서울고등법원 본원 재판부 1개 감소

- 실질적으로는 재판부를 2개 증부하는 것임(고법부장 공석 2 확대)
- 2016년에는 서울고등법원 본원의 미제사건처리 부담이 크게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 본원 재판부 수를 감소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2안] 서울고등법원 본원 재판부 2개 감소

- 실질적으로는 재판부를 1개 증부하는 것임(고법부장 공석 1 확대)
- 인천에 원외 재판부가 3개 개설된만큼 서울고등법원 본원의 사건부담이 감소하지는 않았음 ⇨ 2016년 서울고등법원의 업무처리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끝>

2016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8. 7. 31.

법원 행정처



2016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2018. 7. 31.

법원행정처

I. 검토 배경

- 2016년은 국가 전체적으로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해임
 -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전년도 ⇨ 정치적 역학 구도의 변화를 앞두고 있음
 - 현 VIP의 임기 4년차 ⇨ 권력 누수 현상, 이른바 레임덕[lame duck] 현상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시책이 예상되기도 함
- 사법부 주변 환경에도 역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현황 분석**과 **향후의 변화에 대한 전망** 필요
 - 정치적 역학 구도의 변화와 레임덕 현상 발생 여부 등 ⇨ 사법부의 독자적인 정책 추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현 CJ의 임기가 종반에 다다르고 있다는 특수성 ⇨ CJ의 리더십 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음
- **전망 분석의 내용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
 -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전제로 복수의 대응 방향을 준비할 필요 있음
- **아래의 각 분야별로 향후 환경 변화 전망** ⇨ 이를 기초로 향후 사법부의 대응 전략 수립 준비
 - ①정치권, ②법조계, ③사법부 내부를 기준으로 각각 분석



[2016년 전체 일정 개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법부 외부	4.13 총선		20대 원 구성 司正 정국 [예상]		여당 전당대회		본격 대선 국면 돌입			
사법부 내부	사법행정위 출범		상고법원 19대 국회 추진 종료		대법관 제청·임명					

II. 정치권

1. 현황

가. 개요

■ 키워드 ⇨ ① 당·정·청 관계의 표면적 안정 ② 물밑 갈등 진행 중

- ①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파동 이후 ⇨ 당·정·청 관계는 표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② 총선, 대선 등 중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물밑에서 다시 진행 중 ⇨ 향후 레임덕 발생의 불씨가 될 가능성 있음

나. BH·내각

■ ① 안정된 친정 체제 구축

- BH 이병기 비서실장 체제 ⇨ 전임 김기춘 실장 때와 달리 '인사 잡음'이나 '불통 논란'을 불식시키고 안정화
- BH 참모진 안정 확보
 -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 선임 수석비서관으로서 4대 부문 개혁 진두 지휘



- 현기환 정무수석 ⇨ **총선 출마 뜻을 접고 당·청 가교 역할 계속**
- 우병우 민정수석·김성우 홍보수석 ⇨ **1년 이상 재임 중**

● **내각도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관리 모드' 전환**

■ **② '우병우의 청와대' ⇨ 검찰 파워의 BH 주도 여전**

☑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

- ▶ 1967. 경북 봉화 출생
- ▶ 경북 영주고,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9기
- ▶ 대검찰청 중수1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 ▶ 2013. 변호사 개업
- ▶ 2014. 5.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2015. 2. 민정수석비서관

● **'포스트 김기춘', '王실장에 이은 王수석'**

- 참모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을 제외하고는 VIP가 가장 신뢰하는 인사 ⇨ 참모 3인방이 '정윤희 문건 파동' 이후 윤신의 폭이 좁아졌으므로 현재 사실상 가장 영향력이 막강

● **성완종 리스트로 인한 위기 상황을 넘긴 이후 '순장조'로 분류**

- VIP 임기 종료 시까지 재직할 가능성 높음

● **최근 각종 인사에서 '우병우의 힘' 과시**

- 司正 라인을 '우병우 사단' 이 장악하였다는 평가

☑ **2016. 2. 11자 동아일보 '우병우의 힘 어떻게...검찰-국정원 인사에 의혹의 시선'**

- ▶ 2016. 2. 국정원2차장 인사 ⇨ 법대 동기인 최○○ 부산고검 차장 임명
- ▶ 2015. 12. 검찰총장 인사 ⇨ 호형호제하는 김수남 총장 임명
- ▶ 2015. 12. 검찰 인사 ⇨ 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권○○ 법무부 인권국장 임명
- ▶ 2015. 12. 개각 ⇨ 경제부총리,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에도 영향력 발휘

● **총선 후 도래할 '司正 정국'에서 강력한 영향력 발휘할 것**

- ☞ 구체적 내용은 아래 '법무부·검찰' 항목에서 상세 보고



- 주요 사법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전히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
 - 작년 상고법원 추진 당시 ⇨ 우 수석의 부정적 입장 고수가 정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경험 있음
- ③ BH 최대 관심사 ⇨ 레임덕 방지, 나아가 퇴임 후 대비 본격화
 - 집권 4년차를 맞아 권력 누수 현상 방지가 최대 관심사
 - 중요 정치 일정이 모두 ‘레임덕 방지’라는 화두에 따라 검토·진행될 것 ⇨ ①총선 전 여권 내 권력 갈등, ②향후 정국 운영 기조 등
 - ①총선 전 여권 내 권력 갈등 ⇨ 친박계의 헤게모니 장악
 - ②향후 정국 운영 기조 ⇨ 총선 후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 예상

다. 여권

■ ① 非朴 vs. 親朴의 공천 룰을 둘러싼 갈등 심각

계파	비박	친박
공천 룰	상향식 공천	전략적 공천
명분	정치 개혁	총선 승리
내심의 목표	비박계가 다수인 현역 의원의 교체 폭을 최소화 ⇨ 비주류 당권 유지, 대권 정조준	현역 의원의 물갈이 ⇨ BH·친박계의 수적 열세 만회

- 현재 새누리당 내의 비박계와 친박계의 분포 ⇨ 5.5 : 4.5
 - 하지만 공천 룰 결정의 戰場인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에는 친박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② “김무성 vs. 이한구”와 “김무성 vs. 최경환”의 전면전 예정
 - [총선 전] 공천 룰 ⇨ 김무성 대표 vs.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 [총선 후] 당권 경쟁 ⇨ 김무성 대표 vs. 친박 수장 최경환 의원
 - 힘겨루기 결과에 따른 공천 결과와, 궁극적인 총선 결과에 따라 여권 내 분열의 종착역이 결정될 것



라. 야권

■ ① 더민주 vs. 국민의당 야권 분열 가속화

- 총선 전 야권 연대는 사실상 불가능 ⇨ 대선 정국까지는 각개 약진
 - 서로간의 선명성 경쟁 ⇨ 여권과 프레임 싸움(정권 심판론)에도 불리

■ ② 더민주 ⇨ 김종인 대표 체제 안정화

- 김 대표의 행보마다 다소간의 논란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반대 목소리는 없는 편
- 선거구 확정과 테러방지법 처리 사안을 거치면서 당 노선과 총선 전략을 모두 김 대표가 틀어쥐게 되었다는 평가

■ ③ 국민의당 ⇨ 지지율 담보 내지 하락세

- 각종 당직 인선 등을 놓고 계속된 엇박자로 안철수 대표의 지도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여전

2. 전망

☑ 향후 전망 시 관심의 초점 ⇨ 정권의 레임덕 현상 발생 여부

- ▶ 친정 체제가 확고한 현재의 BH·내각 구성 감안 ⇨ 향후 사법부의 독자적 정책 추진이 가능한 여건 조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현재 체제에 다소간의 변화·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정권의 레임덕 현상 발생 여부가 가장 중요

가. 키워드 ⇨ ① 선거, ② 안보, ③ 사정

- 모두 레임덕과 관련 있는 변수들임 ⇨ '국회의원 총선거'를 전후로 총선 전에는 '안보' 정국, 총선 후에는 '사정' 정국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 ① 선거

- 선거 결과, 특히 여당의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의 레임덕 발생 여부가 판가름될 것 ⇨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대목임



■ 2 안보

-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한 안보 문제 ⇨ 실질적으로도 중요 사안이지만,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정권 차원에서 계속 이슈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과거와 달리 북풍이 곧바로 보수 진영의 호재라고만 보기는 어려움

▶ 2000년 이전

- 1987년 KAL기 테러 ⇨ 노태우 대통령 당선
- 1992년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 김영삼 대통령 당선
- 1996년 판문점 무력 시위 ⇨ 총선 여당 승리

▶ 2000년 이후

- 2002년 연평해전 ⇨ 노무현 대통령 당선
- 2010년 천안함 폭침 ⇨ 지방선거 야당 승리

- 선거 후에도 지지층 결집을 통한 레임덕 방지 목적에서 계속 이슈화할 것
 - VIP의 북핵 관련 국회 연설 ⇨ 지지율 곧바로 크게 반등한 바 있음

■ 3 사정

- 총선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될 레임덕 방지 목적이 강함
 - 특히 공직 사회에 대한 강한 메시지과 재계에 대한 국정 운영 협조 메시지, 그리고 여야의 대선 잠룡에 대한 간접적 컨트롤 등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정 정국이 진행될 것임
 - 총선 결과가 여권에 불리하게 나타날수록 그 강도는 거세질 가능성 큼

☑ 과거 정권 후반기 사정 태풍 사례

- ▶ MB정부 ⇨ 공정사회 확립
- ▶ 참여정부 ⇨ 대북 특검
- ▶ DJ정부 ⇨ IMF 청문회
- ▶ YS정부 ⇨ 역사 바로 세우기

- 총선 이후부터 대선 정국까지 지속될 가능성 높음
- 구체적 내용은 아래 '법무부·검찰' 항목에서 상세 보고



나. 정치적 역학 구도 변화 가능성

■ ① **여당 선거 결과가 무엇보다도 중요** ⇨ **레임덕 여부와, 그에 따라 사법부의 독자적 정책 추진에 유리한 환경 조성 여부 결정**

● [기준점] 현재 새누리당 의석 수 157석 ⇨ 야권 분열 구도를 고려할 때 160석대면 '현상 유지', 170석 이상이면 '압승'으로 평가 가능

- 180석 ⇨ 국회선진화법 개정 가능 의석 수

- 200석 ⇨ 개헌 가능 의석 수

- 다만, 연초까지는 '새누리당이 180석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여권 내부 분열이 심화하면서 현재는 180석 이상의 大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전망이 강함

● 다만, 여당이 압승을 달성할 경우에도 그로 인한 역동적 에너지의 향방에 따라서는 오히려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역설적 상황도 가능
⇨ 결국 의회 내 친위 그룹[친박계 당선자]의 비율에 따라 좌우

- 친박계 당선자 비율이 낮은 가운데 여당이 압승을 거둘 경우 '김무성 대 세론'에 매우 큰 힘이 실려 오히려 VIP의 레임덕 급속히 진행될 수 있음

여당 의석 수	의미 분석	계파 수장 입지	레임덕 여부
~149석	과반 의석 실패	박↓, 김↓	급속히 진행
150~169석	현상 유지 but 압승 실패	박⇨, 김⇨	서서히 진행
170~180석	압승 달성 (180석 이상이면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가능)	친박 비율이 낮아질수록 박↓, 김↑	오히려 급속히 진행
		친박 비율이 높아질수록 박↑, 김↓	진행되지 않음



- 한편, ‘레이턴 없는 대통령’론 대두 ⇨ VIP의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레이턴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 [근거] ⇨ ①총선 낙승 예상, ②콘크리트 지지율 30%, ③친인척 비리 발생 가능성 희박 등
 -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레이턴이 없기를 바라는 VIP 측근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 있음 ⇨ 김무성 대표 등 ‘미래 권력’ 이 구체화되고 그들의 차별화 전략이 시작되면 레이턴 현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
- ② 총선 후 원 구성과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도 긍정적 변화 가능성 있음
 -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 예정 ⇨ 김무성 대표 vs. 친박 수장 최경환 의원
 - ‘7월 전당대회는 대선 전초전’ ⇨ 여당 내에서 극한의 권력 투쟁이 진행될 것임
 - 힘겨루기 결과에 따른 공천 결과와, 궁극적인 총선 결과에 따라 여권 내 분열의 종착역이 결정될 것
 - 판사 출신 주호영, 홍일표 의원 ⇨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 높다고 함
 - 특히 법사위에 사법부에 우호적인 의원들이 포진할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판사 출신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 시 가시화될 가능성 있음



Ⅲ. 법조계

1. 법무부 · 검찰

가. 현황

▣ ① 검찰 라인의 행정부 장악

● 황교안 총리 체제 안정화

- 관료 위주의 내각 인선과 함께 정권 후반기의 ‘관리 모드’ 주도

● ‘우병우의 청와대’

- VIP의 각종 정책 기조에 법무부 · 검찰 입장 적극 반영

▣ ② 사정 라인 재편

● VIP는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패척결’을 화두로 제시

- [對 과거] 검찰 ⇨ ‘부정부패특별수사단’ 발족

- [對 미래] 총리 ⇨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

● 특히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중심 역할을 할 것

- ‘수사력 강화’ 를 당면 과제로 선언한 김수남 총장 체제의 선봉대

- 대선 공약으로 폐지된 대검 중수부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음

- 단장 ⇨ 김○○ 대전고검 차장(연수원 21기)

☑ ‘우병우 사단’의 수사 라인과 첩보 라인에 대한 동시·완전 장악

▶ [수사 라인①] 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 우 수석이 아끼는 후배

▶ [수사 라인②] 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특수부 진두지휘) ⇨ 우 수석과 각별

▶ [첩보 라인①] 이○○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

▶ [첩보 라인②] 최○○ 국가정보원 2차장 ⇨ 우 수석의 서울법대 동기



나. 전망

■ ① 총선 직후부터 사정 정국 조성 예상

- 총선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될 레임덕 방지 목적이 강함
 - 특히 공직 사회에 대한 강한 메시지과 재계에 대한 국정 운영 협조 메시지, 그리고 여야의 대선 잠룡에 대한 간접적 컨트롤 등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정 정국이 진행될 것임
 - 총선 결과가 여권에 불리하게 나타날수록 그 강도는 거세질 가능성 큼

☑ 과거 정권 후반기 사정 태풍

- | | |
|------------------|--------------------|
| ▶ MB정부 ⇨ 공정사회 확립 | ▶ 참여정부 ⇨ 대북 특검 |
| ▶ DJ정부 ⇨ IMF 청문회 | ▶ YS정부 ⇨ 역사 바로 세우기 |

- 총선 이후부터 대선 정국까지 지속될 가능성 높음
-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미 한 차례 사정 드라이브를 시도한 바 있음
 - 2015. 3.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선포한 ‘부패와의 전쟁’ 이 우 수석 작품 ⇨ 성완중 리스트로 인하여 이 전 총리가 사퇴하면서 좌초
 - 금번 사정은 기업 비리가 아닌 공공 부문 민관 유착 비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황교안 총리가 컨트롤타워,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양 날개, 우병우 수석이 뒷받침하는 형국’

■ ② 검찰·법무부의 득세 계속 ⇨ 사법부의 영향력 상대적 약화 우려

- 세월호 사건 수사의 교훈 ⇨ 초반에는 다소 무리했지만 속전속결·총력전식의 수사를 통해 결국 검찰·법무부는 BH의 신임을 획득하였음
- 사정 정국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정권의 신뢰를 확보하려 나설 것임 ⇨ 그리고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 높음



- 물론 그 과정에서는 다소 시행착오를 겪거나 무리수를 뒹으로써 일시적으로 비난 자초·이미지 실추를 겪을 수 있음 ⇨ 하지만 ‘구속 내지 기소’를 성공의 지표로 삼는 검찰 기획수사의 특성상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과는 확보할 가능성이 더 높음

■ ③ 무리한 수사·기소로 인한 후폭풍 ⇨ 부담스러운 사건 처리에 대한 법원 부담 발생·가중

- 성과를 내기 위한 검찰의 수사·기소는 무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여부, 본안에서의 유·무죄 판단 등에서 법원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임
- 특히 민감한 사안의 경우 BH·언론 등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법원의 결정이 그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전 방위적인 비판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 [참고 사례] 2015. 3. 14.자 서울신문 ‘벤츠 여검사 무죄 국민 상식과 거리 멀다’

▶ “대법원의 벤츠 여검사 무죄 판결은 공교롭게도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용을 선언한 날 나왔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손발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대법원이 판단하는 부정부패의 기준은 국민 일반의 상식, 정서와는 사뭇 동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검찰이 부정부패를 적발해도 법원이 과연 국민이 수궁할 만한 수준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대응 방향

■ ① 주요 사건 처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검찰권 적절한 견제 vs. 정권과의 적절한 관계 유지’라는 틀 속에서 사법부가 적절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
- 특히 불필요하게 언론이나 BH의 오해를 살 필요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함 ⇨ 관련 사건 처리 시 진의가 충분히 설명·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야 함
- 관심 사안의 신속 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 ② 사정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지 않도록 내부 구성원에 대한 자체적 단속 강화

- 강도 높은 사정 국면에서 자칫 사법부 구성원의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 사법 개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위기 점검·관리 태세를 강화하여야 함
- 가까운 과거에도 국가적인 위기 상황 또는 사정 정국에서 내부 구성원에 대한 단속을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이 초래된 사례 있음 ⇨ 미온적인 대처로는 위기를 예방할 수 없다는 교훈

☑ 세월호 사고 직후 공직자의 처신과 관련한 위기 발생 사례 있음

- ▶ 사건 발생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였음 ⇨ 하지만 만일 조기 진화에 실패하였다면 어떠한 결과를 불러왔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음
- ▶ 당시에 사례 발생 이전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아 공직자로서 처신에 주의할 것을 미리 내부 구성원에게 안내·공지한 터였음

- 사정 정국 강화 시 전체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에 관하여 안내·공지하여야 함



2. 현재

가. 현황

▣ 최근 현재는 꾸준히 긍정적 이미지를 축적·제고하고 있음

- [對 BH]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 정권으로부터 '체제·정권 유지의 협조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긍정적 이미지 획득
 - 다소 무리한 듯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였으나, 보수적인 여론의 압박을 활용하여 압도적인 차이의 정당해산 결정 ⇨ 결국 법무부와 현재 모두에 대한 BH의 전폭적 지지·신뢰로 이어졌음
- [對 국민] 간통죄 위헌 결정, 폭처법 위헌 결정 등 ⇨ 국민으로부터 '기본권 수호자, 개혁적·진보적 판단자'라는 긍정적 이미지 획득
 -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에 대한 진보적인 결정 ⇨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으로 말미암은 수구적·보수적 이미지를 희석

☑ 2015. 9. 2.자 로이슈 보도 ⇨ "헌법재판소 창설 27년...빅데이터 자유, 이상 '긍정 이미지 77%'"

- ▶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와 빅데이터 분석 업체 (주)e2on ⇨ 언론 보도와 인터넷 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 약 1억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 ▶ 긍정 감성어 77.2% vs. 부정 감성어 22.8%
- ▶ 언론 보도 빈도 순위 ⇨ 1위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2위 탄핵 심판, 3위 간통죄 폐지, 4위 신행정수도 이전, 5위 인터넷실명제 위헌

나. 전망

- ▣ ① 축적한 긍정적 이미지와 정권의 지지를 바탕 ⇨ 총선 이후 도래할 가능성 있는 개헌 정국에서 현재가 유리한 고지 선점 가능성
- [2015년] 정치권 주요 인사 개헌 발언 ⇨ BH는 개헌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감 피력하여 잠재음



- [2016년] 하지만 총선 이후 VIP 레임덕 가시화될 경우 ⇨ 결국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 높음

☑ 2016. 2. 5.자 SBS 여론조사 ⇨ '국민 과반수, 총선 이후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 총선 이후 개헌 논의가 필요한가 ⇨ 53.7%가 "그렇다"

- 통치구조 관련 개헌을 할 경우 ⇨ 4년 대통령 중임제가 56.5%로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를 크게 앞섬

- 개헌 정국 본격 도래 시 ⇨ 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개헌안 마련 되고, 사법부 관련 사항도 전면적 재검토 예상

- CJ의 현재 재판관 지명권, 대법원의 명령규칙위헌심사권 등

- 정권의 헌재에 대한 강한 지지 분위기 ⇨ '대법원 vs. 헌재' 관련 이슈에서 대법원이 수세에 몰릴 것이 우려됨

■ ② 한편, 조만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효력 부정하는 한정위헌 결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큼**

- 집단적 근로 제공 거부를 업무방해죄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정위헌 결정을 감행할 가능성 있음

☑ 헌법재판소 2012헌바66호 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의 주요 내용

▶ 청구인: 강○○ 외 3

- 청구인은 대법원 2012도1039 업무방해 사건의 상고인(피고인)
- 집단적 근로제공거부로 인한 불법 파업을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됨
-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청구인에 대해 유죄 인정

▶ 청구인의 주장

-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 과잉금지원칙 위배, 단체행동권 침해
-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 중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의 거부까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근로3권을 침해할 여지 있음

- 단순 파업에 대하여 원칙적 합법화를 선언하는 결과가 됨 ⇨ 사회적 주목도·파급력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그밖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는 한정위헌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 여러 건 있음

☑ 한정위헌 결정 예상 사건

-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사건(2014헌가18 등) ⇨ 재판상 화해 간주의 효력이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2012다204365 전합판결) 관련
- ▶ 과거사 손해배상 소멸시효 사건(2014헌바148 등) ⇨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12다202819 전합판결) 관련
- ▶ 제주대공무원 사건(2014헌마760 등) ⇨ 법원이 뇌물죄에 관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기각 결정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재판소원 사건
- ▶ 조세감면규제법 사건(2013헌마242 등) ⇨ 법원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관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기각 결정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재판소원 사건
- ▶ 형사성공보수 사건(2015헌마784) ⇨ 2015다200111 전합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여론이 노동·경제적 관점에서의 논쟁에 집중된 나머지 자칫 한정위헌 결정의 부당성 여부가 주목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큼

- 노동계와 진보 진영으로부터 강한 긍정적 여론이, 재계와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강한 부정적 여론이 발생하게 될 것임 ⇨ 특히 노동계와 진보 진영의 오랜 숙원 과제였으므로 논란은 매우 심할 것
- ex. 단순 파업의 업무방해죄 적용에 '전격성, 중대성' 요건을 추가한 대법원 2007도482 판결 ⇨ 한겨레21 등 진보 언론에서 '올해의 판결'로 선정되기도 함

다. 대응 방향

- ▣ ① **19대 국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헌 정국 도래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 있음**



- 19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 헌법학 교수 대거 참여하여 사법부에 불리한 환경 조성된 경험 있음

☑ 19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 ▶ 강창희 국회의장 주도 ⇨ 국회의장 직속 기구
- ▶ 위원장 ⇨ 김○○ 서울대 명예교수
- ▶ 위원 ⇨ 교섭단체 추천 6명, 국회의장 지명 9명 등 총 15명
 - 새누리당 ⇨ 강○○ 서울대 교수, 조○○ 부산대 교수, 권○○ 변호사(김&장)
 - 민주당 ⇨ 김○○ 전남대 교수, 홍○○ 변호사(태평양), 김○ 오마이뉴스 편집주간
 - 국회의장 ⇨ 정○○ 성균관대 교수, 이○○ 서울대 교수, 김○○ 서울시립대 교수, 박○○ 동국대 교수, 송○○ 전 의원, 이○○ 전 고검장,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안○○ 전 국회입법차장

☞ 결과적으로 15명의 위원 중 7명이 헌법학 교수로 구성됨

☑ 위원회 활동 종료 후 보고한 시안 中 법원·헌재 관련 주요 내용

- ▶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틀은 현행대로 유지
-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 등에 대한 지명권 삭제
 - 해당 인사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 ▶ 헌법재판소에는 추상적 위헌법률심사권 부여

- 총선 이후 도래할 개헌 정국에서도 유사한 과정을 밟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헌법학계에 폭넓은 우군 확보 노력
- ‘개헌자문위원회’ 類의 자문기관 구성 시 초기 구성 단계부터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 등

▣ [2] 한정위헌 결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다양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사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한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함

- 한정위헌결정이 불리울 국가 분쟁 해결 시스템 붕괴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여야 함

☑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준비·검토하고 있는 대응 논리

- ▶ 대법원·憲裁의 정면충돌 초래



- 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률해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최초 사례
 - 법적안정성·질서유지의 핵심인 사법기관 갈등 → 국정 안정의 저해요소
 - 국민의 입장에서 극심한 불안과 혼란이 야기됨
 -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판소원'의 전면화
- ② 헌법이 분배한 역할을 부정 → 국가 분쟁해결 시스템 붕괴 → 4심제 초래
 - 대법원·憲裁는 헌법상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대등한 사법기관임
 - 한정위헌 결정은 헌법상 대법원에 부여된 법률해석 기능을 침해함

▶ **파업 공화국 초래**

- ○ '업무방해죄'에 대한 한정위헌 논리 ⇨ 민주노총·民辯의 숙원
- ① 광복 후 70년간 일관된 '위력'의 개념에 관한 해석을 부정 → 법치주의 훼손
 - '업무방해죄'는 제정형법 이후 변경되지 않은 조문임
 - '위력'에 관한 일관된 법률해석의 전면적 부정은 매우 위험한 시도임
 - 사회·국민의식 변화에 따른 '간통죄' 위헌 결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름
- ② 불법파업도 '업무방해죄'로 처벌 不可 → 형사처벌 공백 발생
 - 집단적 연가·조퇴 투쟁, 집단적 잔업·특근 거부 투쟁 → 무죄
 -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합법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는 입장은 아님
- ③ 불법파업 폭증 → 산업계·재계의 부담 급증 → 국가 경제 급속 악화
 - 최근 10년(2004~2013)간 우리나라의 '파업성향'은 연평균 47일
 - 2013년 현대車 파업 손실 2조원 초과 → 4시간 부분파업 + 주말 특근거부



3. 변호사단체

가. 현황

■ ① 하○○ 대한변협회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갈등이 고조

- 변협이 사법부를 동반자로 보지 않고 극복의 대상으로 보아 대결 구도를 조장하고 심화시키려 하는 것 ⇨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통한 존재감 과시 목적

☑ 하○○ 대한변협회장의 특이성·위험성

- ▶ 공공연하고 무조건적인 주류 세력 적대 성향 ⇨ “나는 원래 밑바닥에서 출발한 사람...25년간 판사·검사에게 무시당해옴”
- ▶ 상황·이익에 따라 지향점·소신 변화무쌍 ⇨ ① “내가 사법개혁을 주장해서 그렇지 정치 성향은 보수다” vs. 진보 대법관 옹립 추진, ②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③ 사법시험 존치론에 대한 변호사 밥그릇 확보 논쟁
- ▶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 불사 ⇨ (차 전 대법관 개업신고서 반려에 대하여) “법을 따지면 할 말이 없다...이렇게 눈앞에서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나”

■ ② 최근까지도 각종 월권·노이즈마케팅 행태를 계속하고 있음

-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개업신고서 반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논의 내용 왜곡·발설
 - 특히 김○○ 위원장과 前 법원행정처장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 호도
 - 경향신문 2015. 8. 10.자 “대법관후보추천위 ‘진보라서 안돼’ ...특정 후보 결국 탈락” 제하 보도 ⇨ 국민, 법조계, 법관 사회 등 여론에 악영향
- 상고법원 추진에도 무조건적 반대
 - 반대 근거 홍보 책자 배포, 신문 광고 집행 등 국민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서서 큰 걸림돌로 작용



나. 전망

- ▣ **지도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유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에도 서울변회와 함께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개업신고서 반려 움직임

다. 대응 방향

- ▣ ① **대법원이 직접 대응하는 것은 최고법원의 위신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협회장의 노이즈마케팅 의도에 오히려 부합하게 될 우려** ⇨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대응을 각론적 접근의 기본 원칙으로 함**
 - 언론기관, 특히 보수 성향 언론기관의 칼럼 등을 통한 문제 지적, 우려 표시 ⇨ 변협회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보

☑ 문제 지적·우려 표시의 예시

- ▶ [제목] '변협회장의 몽니', '변협의 의심스러운 행보' 등
- ▶ [내용] '변협 특히 신임 회장은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주창하지만, 정작 형사 성공보수금약정 무효 판결 헌법소원 등 밥그릇 지키기에 주력하면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도 하는 무리한 행위를 일삼고, 최근에는 자신들이 천거한 진보적 대법관의 추천 확보에 실패하였다고 하여 비공개 회의 내용을 왜곡·발설하는 이념적 행보까지 취하는 듯한 상황...우려 표시...'

- ▣ ② **무시·고립 전략도 동시에 구사**
 - 원교근공(遠交近攻) ⇨ ① 변협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무대응, 특히 앞으로 공식적·의례적 접촉 이외에 비공식적·실질적 접촉은 없을 것임을 고지함, ② 그 대신 지역변회와 소통은 더욱 강화하고 공고한 유대 관계 구축
 - 변협을 고립시킴으로써 대립·갈등 관계 조장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점을 변협 스스로 인식하도록 함



IV. 사법부 내부

1. 법관 조직 문화 관련

가. 현황

■ ① 2015년 전반기에는 젊은 법관을 중심으로 법원 조직 문화에 대한 갈등·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무엇보다도 지방법원 배석판사들로부터 부장판사의 합의부 운영 방식 내지 합의부 조직 문화에 대한 갈등·불만이 강하게 제기됨
 - ‘부장과 식사도 하기 싫다’ 라는 식의 노골적 불만 표출 사례가 많고, 음 그 내용의 구체성·强度 등에서 심각한 정도였음
- 특히 故 이○○ 판사 사망 사고 이후로 여론이 악화
 - 불만의 목소리가 법원 조직문화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

☑ Daum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게시판 중 “이○○ 판사님의 죽음을 보며...”라는 글에 달린 댓글 중 일부

▶ “최근 수년간 과거와 달리 사법행정권이 지나치게 중앙집권화, 비대화, 권력화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힘의 균형을 맞추려면 판사회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역할과 유사하게요. 판사회의 관련 제반 법 규정과 내규를 숙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고법원, 고등부장 제도 부활과 같은 중대 사안 추진 시 판사회의와 관련이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②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단지 배석과 부장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구조적 갈등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음

- 즉, 상고법원 등 중요 사법정책 추진기에 법원 조직에 전반적으로 만연한 스트레스와 갈등이 가장 약한 고리인 지방법원 배석판사 계층을 통하여 발현되고 있는 것



- [근본적 원인] ⇨ 사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중요 사법정책의 중점 추진 과정에서 비롯된 정보·비전 공유 부족으로 인한 오해, 불안감 증폭
- [현상적 원인] ⇨ 그 과정에서 가장 지위가 불안정하고 피해의식이 큰 지방법원 배석판사 집단이, 가장 전형적인 스트레스 요인인 합의부 조직 체계에 대한 불만을, 익숙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확대 재생산·표출함

▣ ③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중요 사법정책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합의부 중심의 조직 문화 리빌딩 방안 검토를 실시한 바 있음**

● ① 법관인사정책 개선 방향 공표

- 법조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급변기를 맞고 있는 법관 인사정책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인사정책 안내 글** ⇨ **매우 호평**을 받음

☑ **법률신문 2015. 9. 10.자 보도 내용**

▶ “박 처장의 발표에 **대다수의 법관들이 ‘반갑다’는 평가를 내렸다.** 인사는 최고의 관심사였지만 **궁금증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들이 갖고 있는 인사에 대한 의문과 불안감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지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 이번 발표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이후에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세부 정책에 관한 검토·안내**를 지속함

정책방향	최근 성과	향후 이행방안	15년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정기인사	증장기 검토
법관증원	(사물관할 조정 외) 판사정원법 개정	적정인원 연구용역	용역 세부주제 검토		연구용역 진행		적정 정원	추진	
법관역량 증진	①공시사건 독촉처리 ②참여관의 녹취록검토 등	(사법보좌관 직무 확대 등 관련입법 지속추진 외) 전자소송 부담경감	사법정보화 연구팀 논의		연구팀 논의에 따른 이행방안 수립(2016년 내 반영)		추진	형사 전자소송 장기 검토	
배석·부장 보임형평	①경력상향 향소부, 배석기간 4년 등	순화근무 관련 의견수렴 후 기준 마련	설문조사	설문결과 분석 및 예규개정 여부 검토	법원장 회의의유		사무부담 반영		
모성 및 육아 지원	보육시설 대거 확충 등	유연근무제	설문조사	사차출근 시범법원	법원장 회의의유		유연근무 실시		
		임신법관 배양배려 등	예규개정 여부 포함 종합 검토		법원장 회의의유		배당 반영		
		휴직 연속사용 기준 마련	기준마련		투명공지				
고법판사 운영	성과분석	일반부 비중 확대	운영방안 검토		투명공지			시행	
심임법관 임용개선	다양한 평가기법 마련	심사총실화 및 임용절차개선위	충실화방안 검토		법관임용절차개선위원회		2016년 임용절차 반영	지속논의	
		법전원 출신 법관 인사기준	기준 검토	공지			시행		



- ②시차제출퇴근 실시를 포함한 법관 복지 개선 마스터플랜 공표
 - 법관들의 가장 중요한 불만의 원인은 법관 처우 개선이 뒷전에 밀려나 있다는 오해임 ⇨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로 종합적인 복지 개선 계획 공표
 - 법관 복지 개선에 관한 강력한 정책 추진·실천 의지를 實證할 수 있는 카드를 함께 제시 ⇨ 역시 매우 호평
- ③각급 법원 차원의 합의부의 기능 재편 검토
 - 합의부는 바람직한 재판을 위한 이상적인 업무 단위로서 절대 해체되거나 형해화되어서는 안 됨 ⇨ 합의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폐쇄적인 합의부 조직을 좀 더 개방적인 조직으로 과감히 재편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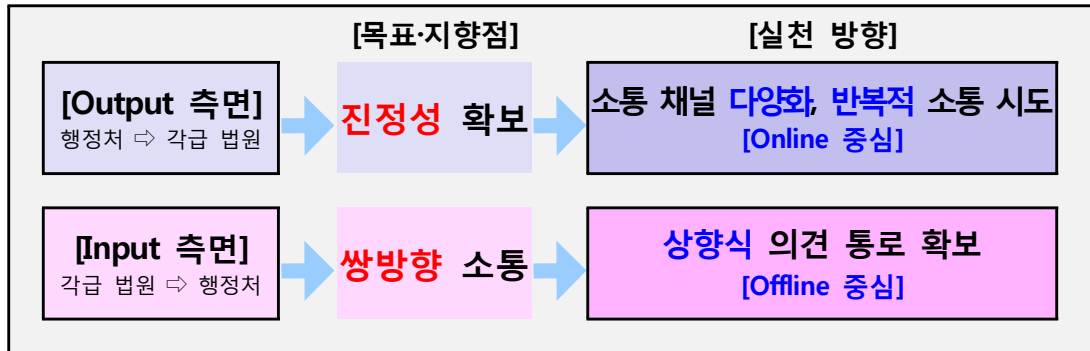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통마당'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합의부 부장판사, 배석판사, 단독판사 대표가 회의체를 구성하여 바람직한 합의부 운영 방안을 논의

- 쉽게 결론이 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사법정책 당국과 각급 법원 수뇌부가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린 것만으로도 여론 개선에 매우 큰 효과가 있었음

나. 전망

- ▣ ① 가장 큰 불만 요소였던 젊은 법관들에 대한 **인사정책 불확실성 해소** ⇨ **당분간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배석·부장 보임 형평에 관한 구체적인 새 기준이 적용된 2016년 정기 인사·사무 분담 결과에 관하여 대부분의 법관들이 불만 없이 수용하는 분위기임
- ▣ ② 하지만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법행정 당국에 관한 오랜 불신풍조를 청산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됨**
 - 뿌리 깊은 불신의 제거 없이는 어떤 정책도 '진정으로'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임 ⇨ 상고법원 추진 과정 회고
 - 다음과 같은 총론적 방향 아래에 각종 프로그램 연구 필요



- [Output 측면] 진정성 확보 ⇨ 맹목적 거부감·오해 최소화
- [Input 측면] 쌍방향 소통 ⇨ 정책의 실질적 완성도·만족도 제고 가능

▣ ③ 특히 상반기 중 출범 예정인 **사법행정위원회**와 관련하여 각급 법원 법관들의 **다양한 needs** 표출에 대비할 필요 있음

- 현재 이미 코트넷의 ‘제도개선법관토론폰방’ 게시판에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관한 건의문이 게시됨

☑ 주요 건의 내용

- ① “위원회 구성원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를 통하여 직접 선출”
- ② “전체회의 설치, 최종 토론 절차 실시”
- ③ “논의 내용의 투명한 공개, 의견 개선 기회 부여”

- 조만간 위원회 출범이 공식화되면 유사한 성격의 각종 개선 요구가 개진될 가능성 있음
 - ① 회고적 관점 ⇨ 상의하달(top-down)식으로 운영되어온 사법행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누적된 요구 사항이 일시에 표출될 수 있음
 - ② 전망적 관점 ⇨ 법관의 권익 옹호를 위한 세력화 움직임과 연결될 수 있음(멀리 ‘판사노동조합’ 문제도 염두에 둘 필요 있음)
- 본격적인 위원회 출범에 앞서서 위와 같은 각종 개선 요구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 방향의 원칙을 정립해야함



- ① 특정 소수에 의한 소통 창구 독점 우려
- ② 전체 법관 여론 왜곡 우려
- ③ 사법부 위기 상황 발생 시에 대립·갈등 증폭 수단화 우려
- ④ 판사노조 등 법관권의옹호를 위한 세력화의 단초 제공 우려
- ⑤ 법원공무원단체(법원노조) 활동에 간접적·부정적 영향 우려

● [구체적 대응 방향] ⇨ 원칙적 입장과 공식적 명분·논리 확립

☑ 원칙적 입장

▶ “(현재로서는) 요구 불수용”

- 다만, “향후 다양한 논의·검토 가능성”을 부가하는 입장이어야 함

☑ 공식적 명분·논리

- ▶ “무엇보다도 위원회 제도의 조기 정착·연착륙을 위해서 현 시점에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실천 가능하고 효율적인 안정적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양하고 실질적인 여러 시도는 위원회의 초기 성과를 관찰·분석한 후에도 늦지 않을 것임”

- 방침의 공표·공유 여부 ⇨ 전체 법관에 대한 공표는 불요, 각급 법원 수뇌부는 정보 공유 필요



2. 상고법원 추진 결과 공표 관련

가. 현황

▣ ③ 2015년 사법부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입법 추진의 사실상 중단은 법관 사회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었음

- 그동안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법원이 지나치게 올인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였음 ⇨ 그로 인하여 각종 인사·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오해도 누적
- 법원 조직 전체의 내부적 동요 ⇨ 중요 사법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폭조 확산, CJ의 리더십 약화 초래까지 우려

▣ 非 **다만**, **각급 법원 법관들의 관심 방향과 그 정도, 공식적·비공식적인 잔여 입법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즉각적인 고수위의 입장 표명은 불필요한 것으로 입장을 정리함**

- 공식적 브리핑도 19대 국회 임기 만료 시(2016. 5. 29.)에 하면 족함
- 어차피 법률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에 폐기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 미리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음

☑ '형식적·공식적 잔여 일정'의 유의미성

- ▶ **홍일표 의원** ⇨ "내년 4월 총선이 끝난 후 임기 종료 시점 사이에 개최될 마지막 임시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때가 되면 의원들이 특정 사안에 참여하게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선선히 협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 **18대 국회의 사례** ⇨ 실제로 **국회선진화법 등 4개 법안**이 총선 후 5월 마지막 임시회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통과되기도 하였음

- 사법행정 당국자의 지나친 유감 입장 표명은 CJ의 레임덕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참고] 대통령 사과의 딜레마·악순환

- ▶ **대국민 사과** ⇨ **국민 분노** ⇨ **레임덕 심화** ⇨ **대통령의 권위 추락**



▶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때마다 국민들은 측은함을 느끼기보다는 분노를 표출하여 결국 레임덕 현상을 심화시키고 대통령의 권위 추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임 ⇨ 고위 책임자의 사과나 유감 표명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극도로 자제하여야 함

- **朴 법원행정처의 표면적인 기조 유지 방침에 따라 현재까지는 법관 사회 여론에 큰 동요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의도한 바와 같이 연착륙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활용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게 되었음

나. 전망

- **③ 적절한 시점에 상고법원 정책 추진에 관한 중간 정리 절차가 필요함**
- 19대 국회 임기 만료 시에, ‘상고법원 정책의 중단’이 아니라, ‘상고심 개선 방안을 포함한 사법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을 표방
- 최종적으로 법률안 폐기 시에는 유감 표명 가능 ⇨ 그 시점까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임기 종반에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제시하는 등 사전 정지 작업 실시
- 중단 선언이 아닌, 중장기 추진 과제로 전환함 ⇨ ‘중요 사법정책의 좌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CJ 리더십 손상 또는 레임덕 가능성을 최소화
- [구체적 방안] 다음과 같이 진행함
- [1단계] 19대 국회 임기 종료 시까지 ⇨ 현재와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되, 여타 주요 사법정책과 균형 도모
- [2단계] 19대 국회 임기 종료 시 이후 ⇨ 상고심 개선 방안을 중장기 추진 과제로 공식 전환



- 이에 따른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

시기	2016. 3.			4.			5.			6.		
	초순	중순	하순	초순	중순	하순	초순	중순	하순	초순	중순	하순
주요 일정				총선			임시국회		19대 임기 종료			20대 원 구성
추진 개요	3정책 우선순위 조정, 임기 종반의 비전 제시									非의견 표명		
구체 내용	-대표 정책, 민생 정책 등 임기 종반의 적극적 추진 정책을 전면내 내세워 추진함 -상고법원 추진은 현재와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되, 여타 주요 사법정책과 균형 도모						-최종적으로 법률안 폐기 시 유감 표명 -중장기 과제로 공식 전환					

■ **非 더불어 CJ 임기 종반에 추진되어야 할 비전·정책의 적극적 발굴·추진이 필요함**

- ‘상고법원 추진 중단’이라는 ‘부정적·소극적 행보’가 아니라 ‘여타 주요 사법정책의 균형적 추진’이라는 ‘긍정적·적극적 행보’를 통하여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방안 구사

- [구체적 방안Ⅰ] **CJ 대표 정책의 완성**

☑ [참고] 대표 정책·업적의 중요성

- ▶ 지도자는 퇴임 후에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 업적이 있어야 함 ⇨ 이를 통하여 훗날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음
- ▶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 ‘물대통령’, ‘레임덕 정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5년 내내 흔들렸으나, ‘북방정책’이라는 대표 업적 덕분에 나름대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음

- 현 CJ의 대표 정책은 결국 ‘소통 정책’ 이어야 함 ⇨ 임기 종반에는 임기 동안 진행된 소통 정책을 최대한 완성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①국민과의 소통 ⇨ 행사 중심의 소모적 형태를 지양하고 스마트한 소통 정책의 완성 형태를 연구하여 현 CJ의 임기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중장기적 소통 정책을 제시하여야 함



- ②내부 소통 ⇨ ‘사법행정위원회’ 등 사법행정 과정에서의 철저적 참여 보장을 제도화하여야 함, 이는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쌓인 법관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효과도 클 것임

● [구체적 방안②] 민생 정책 강조·주력

☑ [참고] 민생 정책의 중요성

- ▶ [예] 한국 대통령의 경우 ⇨ 결국 임기 말 시점의 경제 성적표가 대통령 임기 전반에 대한 평가를 좌우함
- ▶ [예] 2012년 미국 대선의 경우 ⇨ 태풍 피해가 발생하자 오바마와 롬니는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전략에 주력, 특히 오바마가 3일 동안 유세를 중단한 것이 큰 호응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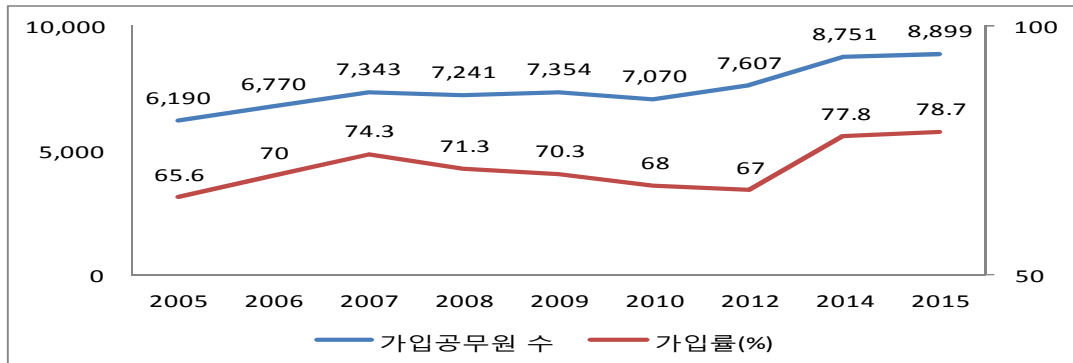
- 법관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소형 이슈’ 들을 전면에 내세워 검토·추진할 필요 있음
- ①복지 ⇨ 이미 상당히 많은 아이템이 개발·집행되었으나, 더욱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 ②법원 문화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성 평등, 부장-배석 관계, 사무 분담, 근무 평정,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라인 보임 문제 등의 이슈를 CJ가 직접 챙기고 개선 방향을 제시



3. 법원공무원단체

가. 현황

▣ ③ 가입 공무원 수, 가입률 추이



- 최근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긴 하나, 전공노 법원본부 체제에서 가입자 수와 가입률이 상당한 상승세

- 신규 서기보들이 거의 대부분 가입하기 때문 ⇨ 전교조의 신임 교사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과 대비됨

☑ 분야별 조직률 현황

▶ 공무원 평균 64.1%, 교원 14.5%, 민간기업 9.3%, 법원 78.7%

- 전교조의 경우 2014년 조직률이 1년만에 2.3% 감소하는 등 상당한 하락세임

▣ 非 사법부 노사관계 전반에 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 각종 불법 관행, 부적절 행태가 누적되고 있음

- 주로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기회주의적, 공격적, 책임 회피적 행태를 보임

☑ 2015. 3. 18. 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과장·왜곡

▶ “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 상당수(78%)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기관에 전달하여 보도되도록 함

▶ 설문조사 응답자 수 부족(전체 구성원 16,300명 중 940명 응답)으로 조사 결과가 대표성을 갖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장·왜곡함

☑ 2015. 11. 12. ‘전공노 법원본부’ 명의로 코트넷에 성명서를 게시함

▶ 법원행정처와 법원공무원단체 사이에 진행된 의견 수렴 과정의 진행 경과를 폄하하고 그 책임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전가하는 내용



- 대응 수위·정도의 상향 조정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
- 법원공무원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그동안의 사회적 논의의 진행 경과를 정책에 반영[update]하여야 함

☑ **법적 지위에 관한 기존의 법률적 쟁점**

- ▶ ① 전공노가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② 법원노조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③ (전공노가 설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노조는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노조가 (현재까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장 중요한 쟁점인 ‘전공노의 설립 여부’ (위 ①쟁점)에 관한 사법부와 행정부의 주요 판단이 최근 잇따라 이루어짐 ⇨ [사법부] 두 차례의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전공노 패소 확정, [행정부] 전공노의 설립신고서를 재차 반려, 전공노 사무실 폐쇄 집행 완료
- 비록 아직 ‘법원노조의 소멸 또는 존속 여부’ (위 ②,③쟁점)에 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현재의 법원공무원단체가 ‘전공노 법원본부’를 표방하는 한, 노조로서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은 법률적으로 명확해졌음
- 다만, ‘법원노조’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는 위 ②,③쟁점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2007년도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2012두10017)은 아직 선고되지 아니함

▣ **차 전공노의 변화와 합법노조의 출현**

- 온건파 전공노 위원장(이○○) 사퇴 ⇨ 2015. 6.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설립
- 이후 세력 판도 ⇨ 합법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약 12만 명, 비합법노조인 전공노 14만명, 전교조 약 6만 명
- 전공노 신입 집행부는 NL 계열 정파 소속으로서 초강경 기조가 예상 ⇨ 반면, 법원본부 신입 제5대 집행부는 비교적 합리적일 것으로 예상



☑ **법원본부 신임 제5대 집행부**

- ▶ [본부장] 김○○(주사보, 서울중앙지법 민사신청과 기록보존 담당) ⇨ 비교적 **鎮重하고 합리적인 성향**으로, 논리적인 문제제기 및 결론을 선호함
- ▶ [사무처장] 이○○(주사보, 서울고법 총무과 재판기록 열람복사 접수 담당)
- ▶ [조직국장] 윤○○(주사보, 대전지법) ⇨ '상당히 공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이 우려된다, 견해가 다를 경우 대화가 어렵다'라는 평 있음

나. 전망

▣ ③ **노사관계 근원적 재정립 필요**

- 종래 법원행정처는 위와 같은 법원공무원단체의 **법적 지위상 불명확성을 이유로, 또한 그에 기대어, 유보적 스탠스를 취해왔음**
 - 특히 이를 통하여 **단체협약 체결 요구,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이러한 유보적 스탠스가 법원공무원단체의 비정상적 행태의 간접적인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있음
 - [법원공무원단체] ⇨ 법적 지위가 불안정함으로 말미암아 **돌발적인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면 전환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함**
 - [법원행정처] ⇨ 공무원단체의 불법 관행에 대하여도 **정치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인 원칙을 제시하면서 대응하기 어려웠음**
- 적극적으로 '합법 노조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변화 검토 시점임

☑ **기대 효과, 고려 사항**

- ▶ 높은 수위로 집행될 각종 강경 대응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정책 방향의 근원적 변화로 인한,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것이라는 메시지** 전달 가능
- ▶ 한편, **실제 합법 노조 재출현과, 그로 인한 노사 현안 증가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그리 크지 아니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고려(↳ ∵ 전공노 자체의 해체·해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금전적 문제·연대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법원공무원단체의 전공노 탈퇴와 법원노조로의 회귀는 쉽게 실현되기 어려움, 다만, 이에 관하여는 좀 더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 요망)



▣ **非** 변화된 기조에 따른 **구체적 대응 방안**

- 일관된 메시지 전달 ⇨ 합법노조 전환을 내세워 불법관행 해소 명분 축적

- 공세적 압박 조치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비전 제시가 이루어져야 충돌·대립 과정에서 여론의 반발을 막을 수 있음 ⇨ 합법노조 전환이 유일한 해결 방안임을 인식시켜야 함

☑ **메시지 전달 구체적 방법**

- ▶ [對법원공무원단체] ⇨ 비공식적 경로로 사전 전달
- ▶ [對사법부 구성원] ⇨ '先대응 後천명'
- ▶ [對언론, 행정부 등 외부 기관] ⇨ '법령에 따른 원칙적 조치'

- 불법관행 해소 조치의 적극적 집행

- ① '전공노 법원본부' 명의 활동 금지, ②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활동 금지, ③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 금지 등

[끝]



20대 총선 이후 주요 상황 보고

2016. 4. 18.

기획조정실

1. 19대 국회 임시회 개최

가. 경과

■ 국민의 당

- 4. 15. 주승용 원내대표(4선, 여수을) ☞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경제 관련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19대 국회 임시회 개최 제안
 -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싸움만 하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개혁하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
 - 쟁점 법안 중 하나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

☑ 조선일보(4. 16.), “제3당이 던진 경제, 세월호법 딜”

- ▶ 국민의당이 “세월호법”과 “경제 관련 민생 법안”의 딜을 제안한 것
- ▶ 더민주당(세월호법)과 새누리당(경제법안)을 모두 끌어안으면서 단순한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넘어서 **국회 운영의 중심축**이 되려는 포석

- [참고] 국민의당은 더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입당으로 현재 19대 국회에서 20명의 의원을 보유하여 교섭단체가 된 상태
 - 주승용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로서 첫 협상 제안을 한 것

☑ 국민의당 소속 제19대 국회의원 명단

- ▶ [20대 당선 ☞ 총 11명] 권은희, 김관영, 김동철, 박주선, 박지원, **안철수(공동당대표)**, 유성엽, 장병완, **주승용(원내대표)**, **천정배(공동당대표)**, 황주홍
- ▶ [20대 낙선 등 ☞ 총 9명] 김○○(낙선), 김○○(불출마), 문○○(낙선), 부○○(낙선), 신○○(불출마), 임○○(불출마), 전○○(경선탈락), 정○○(낙선), 최○○(낙선)



■ 새누리당

- 원유철 원내대표 ☞ “마지막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긍정적 답변
- 20대 국회 前 쟁점 법안 처리에 목이 마른 입장 ☞ 임시회 개최 찬성
 - ① 서비스발전기본법, ② 노동개혁 4법, ③ 테러방지법, ④ 법사위에 계류 중인 수백 건의 무쟁점 법안 처리 필요
 -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처리 불가

☑ 한국일보(4. 16.), “마지막 임시국회 열자. 국민의당 주도권 잡기”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국민들로부터 그런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해 적극적인 입장이다.

■ 더불어민주당

- 이종걸 원내대표 ☞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
 - ① 법사위에 계속 중인 무쟁점 법안 처리 및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에 대하여는 동의
 - ②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쟁점 법안 처리에는 부정적 입장 견지

☑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

▶ [연합 4. 16.] 이종걸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이번 총선 결과는 무리한 법안을 실제 내용과 다른 '경제활성화'나 '테러방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며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선 4. 16.] 김종인 대표는 “진짜 민생 관련법이라면 야당이 무조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민생을 빙자해 사회전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특정계층이나 특정 지역과 관련된 입법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 4. 16.] 더민주 관계자는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가 되지 않은 법안을 포함해 세월호 관련법 처리에 대한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의당의 새로운 제안들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 정의화 국회의장

- 3당 원내대표에게 5월에 19대 국회 임시회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 ☞ 오늘(18일) 오전 10:30 국회의장실에서 첫 회동
 -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한 뒤 첫 3당 원내대표 회동
- 회동 결과 ⇨ 3당 원내대표 임시회 개최하기로 합의
 - 임시회 회기: 4. 21. ~ 5. 20.
 - 본회의는 5월 초순, 중순 각 1회씩 총 2회 개의 예정

나. 분석 및 전망

▣ 19대 국회 임시회 개최하기로 합의한 배경

- [전례] 15, 17, 18대 국회의 경우 총선 후 임시회 개최한 전례 존재
 - ☞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통과
 - 13, 14, 16대 국회는 총선 후 임시회 개최하지 않았음
- 형식적으로라도 국회 개원하여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
 -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탈피
- 처리 시급한 무쟁점 법안 다수 존재
 - 법사위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 기다리는 법안 총 4개
 - 법사위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다수
 - (예) 여야 합의가 끝난 보훈처 소관 법률(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
 - (예)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피해자구제법)

▣ 다만,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실제 의사일정이 확정될지 여부 불투명

- 의사일정이 확정되기 어려운 사정
 - 여야 모두 원내대표 선출 및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9대 국회에



집중할 여력 부족

- 특히 여당의 경우 예상치 못한 총선 참패로 5월초 원내대표 경선을 둘러싸고 親朴과 非朴 사이의 계파 갈등 심화

- 20대 총선으로 현역 의원 절반 가량 물갈이 된 상황

-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 발생할 우려도 존재

● 의사일정이 확정되더라도 쟁점 법안보다는 무쟁점법안 위주로 처리될 가능성 큼

-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가 크고, 20대 총선에서 慘敗한 새누리당이 지난 2월 임시국회 때처럼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 더민주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이 아닌 ‘경제상생’ 법안이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누리당의 ‘민생법안’ 우선 처리 프레임에 대응

☑ 연합뉴스(4. 18.), “여소야대 만든 총선 후 첫 3당 회동, 국민의 당이 상전”

▶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입장이 같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관련 법률이나 청년 일자리 고용 할당제,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등은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두 야당의 공조를 기대했다. “청와대발 경제활성화법이 거부당한 것이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주요 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노동4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세월호특별법
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법, 산재보호법 조속 처리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위해 보건, 의료분야도 포함	이미 통과된 테러방지법과 쌍둥이법안보상 도입 필요	특조위 임기(6월말) 연장반대
더민주당	전부 반대 자체 마련한 노동관련 법안 처리	의료 민영화 우려되는 보건, 의료 분야 제외	반대	특조위 활동기한 연말까지 연장하기 위해 법개정 필요
국민의당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나머지 노동3개 법안은 우선 처리			



- 임시회가 개최되더라도 3당 모두 원내대표 경선, 전당대회 등의 일정을 빠듯하게 소화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으로 특별한 현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은 없을 듯
- 국회법상 모든 임시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만일 의사일정이 확정되면, 사법시험법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올 가능성 존재

☑ 서울경제(4. 4.)
 오신환 의원은 “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곳에 왔을 때 현재 정무위원회인 저의 상임위를 5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며 “법사위에서 사법고시 존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BH 상황

☐ 총선 직후 짧은 입장만 발표 ⇨ 조선, 동아 등 보수언론도 BH 질타

- 총선 직후인 14일 오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 이러한 요구가 (총선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며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짧은 입장만 발표

☑ 대통령 발언 내용

- ▶ 총선 직前 4. 12. 국무회의
 -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 총선 직후 4. 14. 논평
 - “국민의 이러한 요구가 (총선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
- ▶ 총선 직後 4. 15. 한국/노르웨이 정상회담
 -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 아래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 **조선,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도 BH 비판**

- 조선일보 ☞ **총선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에 있는데도 공감할 수 없는 논평을 내놓았다고 비판**

☑ **강○○(조선일보 4. 16.), “4·13 총선, 정치 정상화 계기 될 수 있다”**

▶ 4·13 총선은 뒤집힌 민심(民心)의 바다를 보여주었다. 바다가 뒤집힌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은 두 줄짜리 공식 논평을 내놨다.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 (이번 총선 결과는) 국민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 이 논평에 공감(共感)했을까.** 이 상태에서 새 뜻을 바꿔 달 수 있을까. **4·13 총선은 한마디로 대통령이 진 선거다. 새누리당이 참패한 이유를 다섯 가지고 열 가지고 얼마든지 짚을 수 있지만 패인(敗因)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 대통령 근처에 닿는다.** 공천 희극(喜劇)과 국회 심판론 무대에서 새누리당은 서툰 조연(助演)에 지나지 않았다.

- 동아일보 ☞ **대통령의 논평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난**

☑ **김○○(동아일보 4. 16.), “싸가지 없는 친박, 보수시민의 역적 됐다.”**

▶ 4·13총선 뒤 첫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리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주시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대통령은 수없이 “국회 심판”을 외쳤지만 국민은 되레 정부여당을 심판했다.** 2년 전 6·4지방선거부터 작년 4·29재·보선까지 여당이 이긴 선거가 끝날 때마다 청와대 논평과 별도로 ‘국민의 뜻’을 언급했던 대통령이 이번 선거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싶어서다. **여당의 참담한 패배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이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발표한 논평은 국민의 기대에 턱없이 모자란다.** 이번에도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 탓만 해온 국정 운영을 사과하고 수평적 당청 관계, 국회와의 관계를 모색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 **오늘(4. 18.) 오전 10시 개최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대 총선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발언**
- 선거 결과에 대한 구체적으로 분석하거나 반성하는 내용은 없음
-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 “20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정도



의 추상적 발언에 불과

- 이번 발언을 두고, 더민주당, 국민의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 들조차 구체적인 평가와 반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비판

☑ 박근혜 대통령 4. 18. 수석비서관 회의 메시지 전문

▶ **[선거관련 메시지]** 지난주에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대 국회가 경제와 민생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침체와 북한의 도발 위협을 비롯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들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과 내각은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다가는 저성장의 소용돌이에 같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도 선거 때문에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수석들은 고용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내각과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더 많은 일자리를 더 빨리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면서 체감도 높은 일자리 대책과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정]** 이번 주에 재정전략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 회복 지원과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재정개혁과 전략적 자원 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큼니다. 재정 누수를 방지한 상태에서는 재정 지출을 늘려도 효과가 없고 재정 건전성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간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과 또 보조금 개혁 등의 성과를 발판으로 해서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전 부처가 인식을 공유하고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가 채무 부담으로 재정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재정의 경기 보완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에 재정

이 투입되도록 전략적인 자원 배분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과가 낮은 사업은 줄이고 거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해서 이번 재정전략회의가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은 덜고 믿음은 키우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 **[안보]** UN과 미국, 일본, EU 등 각국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은 이에 반발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각종 실험과 청와대 타격 영상 공개 위협, GPS 교란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립 회피와 체제 결속을 위해서 어떠한 돌발적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내부의 대비가 중요합니다. 군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도발 형태로 도발을 해오더라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각급 부대별로 장병들의 사기 고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가 많은 우리 장병들에게 앞으로도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우리 내부 역시 안보와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할 것입니다.

■ **대통령 발언의 배경**

-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국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일하는 정부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참모진 개편 등 외부 요구에 위축되지 않고 현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 대통령은 이미 주말동안 비서관 회의 등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의지를 참모들에게 전달하였다고 함
- ①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의 중단 없는 추진**, ② **재정 개혁**을 통한 전략적인 재정 배분, ③ **안보 대비 태세 강화**를 주문한 것도 이와 같은 상황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음

■ **국정 운영에 대한 향후 전망**

- 언론이 기대하는 **인적 쇄신은 없을 것임**



- [청와대 비서진 개편] 부정적
 - 신○○ 정부비서관(십상시 멤버 중 한 명)은 이미 3년 이상 근무하였고, 공기업 감사 자리가 보장되어 총선 전날 사의 표명한 것
- [개각] 부정적 ☞ 장관 교체하려면 인사청문회 필요하나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 국정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령을 비롯한 정부의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면서 대국민 직접 정치를 할 가능성 큼
-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한 국정 운영 주도권 유지
 - ① 현재 선거사범 98명 수사 중, ②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로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당선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후색선전, 여론 조사 결과 왜곡, 허위사실 유포(예: 야권 단일 후보) 등의 증가로 선거사범이 19대 총선보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인위적으로 사정 정국을 조성하기보다는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렛대로 삼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계속 확보한다는 계획
 - 다만, 임기 말로 갈수록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력이 저하될 우려 존재 ☞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력 유지가 관건이므로, 검찰 등 권력기관에 더욱 강력하게 친정 체제 구축할 것으로 예상됨
- 개헌 논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일각에서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개헌론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 중
 - 개헌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국민의당이 원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쟁점화될 수 있음. 따라서 BH는 개헌 논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조선일보(4. 16.), “김종인, 대선 3자구도 전제로 준비”

▶ 김 대표는 안 대표의 ‘결선 투표’ 제안에 대해선 “개헌을 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동의를 해주겠느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끝>

개헌 정국과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8. 7. 31.

법원 행정처



개헌 정국과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2018. 7. 31.

법원행정처

I. 검토 배경

- ▣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음**
 -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개원사를 통해 화두를 던진 데에 대하여 거의 모든 정파가 화답하는 형국 ⇨ 19대 국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숨意를 살펴볼 필요 있음
- ▣ 개헌 논의는 중국적으로 실제 개헌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논의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이슈임**
 - 누적되는 개헌 논의에서 사법부가 사수·탈환·상실하는 '권력 point' ⇨ 실제 개헌 진행 시 한순간에 '사법부 권력 지도'로 확정되는 것
 - 급변 논의의 심도를 예측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전력투구할 필요 있음
- ▣ 개헌 정국과 사정 정국 하에서 신중한 **현황 분석과 전망**,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기임
 - 사법부 外的인 변화가 중심 ⇨ 급변 분석에서는 사법부 내적 문제는 제외하고 ①정치권과 ②법조계에 중점을 둬

[2016년 전체 일정 개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법부 외부	4.13 총선		원 구성 司正 정국		여당 전당대회				본격 대선 국면 돌입	
사법부 내부		사법행정위 출범		상고 법원 19대 국회 추진 종료			대법관 제청·임명			



II. 정치권

1. 현황

가. 개요

■ **키워드** ⇨ ① **백가쟁명식 견해 표출**, ② **동상이몽의 한계 극명**

- ① 개헌 자체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긍정적 여론이 지배적 ⇨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뚜렷한 견해차

☑ **개헌 필요성에 관한 지배적 여론**

▶ 20대 국회의원 여론조사 ⇨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3%(300명 가운데 250명)(6. 19. 연합뉴스)

▶ 일반 국민 여론조사 ⇨ '개헌론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69.8%

☑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견해 차이 큼**

▶ 20대 국회의원 여론조사 ⇨ 4년 중임제 46.8% vs. 의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 38.4%(의원집정부제 24.4%, 의원내각제 14.0%)

- ② 하지만 개헌 자체에 대한 진정성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 논의를 활용하고 있을 뿐 ⇨ 분석과 전망에 중요한 포인트

나. 표면적 상황

■ ① **국회의장** ⇨ **가장 강력한 의지 표명**

- 6. 13. 국회 개원사,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 ⇨ 6. 14.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 ⇨ 6. 16. 기자회견, “가능하면 20대 전반기에 개헌”

■ ② **야권** ⇨ **찬성론 우세 속에 다양한 의견 표출**

- **김종인, 박지원** ⇨ 의원내각제 지지
- **문재인, 박원순** ⇨ 4년 중임제 지지
- **안철수** ⇨ “국민 동의 구하는 것이 순서”



■ ③ **여권** ⇨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관심과 신중론 양립**

● 김무성 ⇨ 6. 20. “개헌은 내 소신”, 분권형 대통령제 지지

- 남경필 ⇨ 이원집정부제 + 수도 이전·지방 분권

- 유승민 ⇨ 4년 중임제 / 이재오 ⇨ 개헌 전제 창당 추진

● 정진석 원내대표 ⇨ 6. 20.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반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지 않아야, 개헌 논의 위협”

■ ④ **BH** ⇨ **반대 입장 유지 속에 미묘한 기류 변화**

● 표면적 입장 ⇨ 반대 입장 유지

- 19대 국회 당시 ‘개헌 블랙홀’論 ⇨ “개헌이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 4. 26. 총선 직후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 “개헌은 다음에 경제가 살아났을 때, 국민 공감대를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 **‘참 나쁜 대통령’論**

▶ 2007. 1.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원색적 비난을 가한 바 있음 ⇨ 향후에도 VIP가 개헌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6. 21. 국무회의를 통하여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음

● 眞朴 의원들 움직임 ⇨ 미묘한 기류 변화

- 정종섭 ⇨ 6. 16. 개인 블로그,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다. 이면적 숨意

■ ① **국회의장** ⇨ **대권 잠룡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강한 정치적 모티브**

● ‘대권으로 가는 우회로’로서 국회의장직을 택했다는 일각의 분석 있음 ⇨ 임기 동안 개헌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를 통해 획득한 강한 정치적 추진력·이미지를 바탕으로 대권 레이스에 재도전하고자 한다는 예측 있음



- 개헌론은 역대 국회의장의 개원사 단골 메뉴였던 것이 사실이나, 정 의장의 경우 그 추진 의지가 남다름 ⇨ 최소한, 대선후보로서 이루지 못한 정치적 성취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개헌 추진 예상

■ 2 야권 ⇨ 미래 권력의 “분점 vs. 독점”의 대립·갈등 구도

● 김종인·박지원 ⇨ 킹메이커가 아닌 실세 권력 분점 희망

- 김종인 ⇨ 오는 8월로 대표 임기 종료된 후에도 경제민주화 등 자신의 주요 정책 추진 희망, 문재인 대표와 갈등·불신도 여전함 ⇨ 지난 총선에서 보인 바와 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의원내각제 하에서 권력 지분을 확보하면서 정치적 뜻을 펼치기를 희망할 듯
- 박지원 ⇨ 제3당의 한계와 안철수의 집권 실패 우려 등에 대한 고려가 의원내각제 지지의 바탕일 듯

● 문재인 ⇨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로서 권력 독점 희망

-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 중임제만을 지지하고 있음

■ 3 여권 ⇨ 독자적 정권 재창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정치공학 적 고려·계산

●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론 ⇨ 이원집정부제를 바탕으로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검토되고 있는 듯함

● 반드시 반기문 카드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쇠락하거나 여전히 군소 후보 처지를 면치 못하고 있는 여권 잠룡들 ⇨ 분권형 대통령제가 집권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음

- 이원집정부제를 포함한 분권형 대통령제 ⇨ 과거 DJP연합과 같이, 향후 국민의당을 비롯한 각종 정파와 제휴하는 데에 중요한 밑그림으로 가능
- ex. 남경필의 수도 이전·지방 분권론 ⇨ 지역 세력을 포함하여 더욱 넓은 제휴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의도로 보임

● 다만, 총선을 통해 당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친박계 ⇨ VIP의 의중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주시하고 있음



▣ 4 BH ⇨ 퇴임 후 대비, 레임덕 관리, 업적 관리, 경제 살리기 등의 다면적·복합적 관점에서 고심

- VIP는 원래 反개헌론자가 아님 ⇨ 한나라당 부총재 시절과 야당 대표 시절엔 '가장 강력한 개헌론자'로 통했음
 - 4년 중임제는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함
- 하지만, 과거의 인행 부담('참 나쁜 대통령'論)과 현재의 경제 상황, 극한의 레임덕 발생 위험 등 ⇨ 적극적·공식적으로 개헌 논의를 주도해 나가기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입장임
- 그러나 한편, 정권 재창출을 통한 퇴임 후 대비, 빈약한 업적 관리 측면 ⇨ 개헌 추진은 여전히 매력적인 카드인 것도 사실임
 - 특히 '권력 상실 후의 배신'에 대하여 극도의 트라우마를 가진 VIP ⇨ 결국 퇴임 후 영향력 유지에 더욱 집착할 것이고, 이러한 스타일은 지난 총선에서 친박 공천을 위한 각종 무리수로 입증된 바 있음
- 이러한 와중에 '진박' 정종섭 의원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 있음

☑ 정종섭은 VIP의 '개헌 아바타' ?

- ▶ 오래 전부터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해온 헌법학자
- ▶ 애초부터 VIP의 '개헌 밀명'을 띠고 국회에 들어온 인사로 보는 시각 있음



2. 전망

가. 분석 기준

■ **두 단계의 수준에서 검토 필요** ⇨ ① 실제 개헌안 발의·통과 가능성, ② 개헌 논의 실질적 진행 가능성

● 개헌 논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사법부, 특히 사법행정 당국으로서는 최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특히 현재와 같은 정국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러함

나. 실제 개헌안 발의·통과 가능성 ⇨ 극히 희박함

■ ① **대통령 주도형의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

● 가장 효율적인 방식의 개헌 추진이 불가능 ⇨ 국회 주도형의 개헌에는 1년 6개월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임

■ ② **개헌의 범위, 통치구조 등에 관한 공감대도 전무**

● 통치구조에 관한 지배적 합의가 없어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도 말처럼 쉽지 않음 ⇨ 통치구조 외에도 개헌 수요가 널리 제기되고 있어 이른바 ‘포괄형 개헌’, ‘생활형 개헌’ 요구를 외면하기도 어려움

■ ③ **현실적으로는 임기 불일치 해소 문제를 넘어서기 어려움**

● 개헌 명분의 하나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 문제를 맞추기 위한 임기 단축 문제 ⇨ 양측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

■ ④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과 재계의 거부감 강함**

● 4년 중임제는 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정치 생명을 건 절실한 지지가 아님 ⇨ 그나마 정치적 생존을 위하여 진지하게 추진될 가능성 있는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는 국민과 재계의 심리적 거부감을 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다. 개헌 논의 실질적 진행 가능성 ⇨ 상당히 높음

■ ① 개헌을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에 결부하는 세력 다수 존재

☑ 개헌을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에 결부하는 세력

- ▶ 국회의장 ⇨ 개헌 자체의 타결을 통한 정치 역량 과시·대권 재도전
- ▶ 새누리 친박계 ⇨ 반기문 대망론 등 대선 주자 부재 상황 타개책
- ▶ 여권 잠룡 ⇨ 제3세력과 합종연횡 모색에 유효
- ▶ 김종인·박지원 ⇨ 의원내각제 하에서 야권 맹주로 지분 확보·집권 가능

■ ② VIP·BH가 굳이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논의 유도 가능한 상황

- 정중섭 의원 등 일부 '진박' 의원을 활용하면 '친박' 의원들에게 박심을 간접적으로 전달 가능 ⇨ 개헌 논의의 개시 여부, 진행 속도 등을 충분히 컨트롤 가능

- 따라서 VIP는 공식적으로는 '개헌 블랙홀' 논을 고수할 가능성 높음

■ ③ 특히 야권 견제에 매우 유효한 카드

- 결정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사안에서 절대 같은 배를 탈 수 없음 ⇨ 개헌 논의가 심화할수록 대립·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미래 권력의 "분점 vs. 독점"의 대립·갈등 구도

- ▶ 김종인·박지원 ⇨ 킹메이커가 아닌 실세 **권력 분점** 희망
- ▶ 문재인 ⇨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로서 **권력 독점** 희망
- ▶ 지난 총선을 겪으면서 **양자간에 반목과 불신의 앙금**도 여전함

- 극심한 레임덕을 겪고 있는 VIP ⇨ 야권 유력 대선 주자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를 버리기 어려울 것임

- 본인이 직접 나설 필요도 없고 계파 소속 의원들을 통하여 적당한 속도로 개헌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만일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려 한다면 개헌 논의가 상당한 심도를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될 것임



3. 대응 방향

▣ ① 헌법특위 등 논의·자문 기구 구성 시 적극 대응

- 19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 헌법학 교수 대거 참여하여 사법부에 불리한 환경 조성된 경험 있음

☑ 19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 활동 경과

- 2014. 1.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구성 ⇨ 개헌시안 작성
- 2014. 5. 개헌시안 발표 후 활동 종료
- 2014. 7. 최종보고서 발간

▶ 당시 헌법 개정 시안 주요 내용 ⇨ 의회 중심의 분권형 권력구조

- 대법원 최고법원성 유지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유지 / 대법원의 명령·규칙·처분 위헌심사권 유지 / 대법관 수 증원 없음 / 헌법소원 현행 유지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인 지명권 삭제 / 헌법재판관 자격 비법조인 확대 / 대법원장 선관위원 3인 지명권 삭제

▶ 헌법개정자문위 활동의 교훈

- 선제적 대응·철저한 사전준비의 필요성 → 전사회적 우군확보 전략 필요
- 공세적 대응의 필요성 → 외부의 공격적 논의에 대한 방어 차원의 대응이 아닌 다양한 공격적 방안 사전 준비·홍보 필요

- 총선 이후 도래할 개헌 정국에서도 유사한 과정을 밟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헌법학계에 폭넓은 우군 확보 노력
- ‘개헌자문위원회’ 類의 자문기관 구성 시 초기 구성 단계부터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 등

▣ ② 법원행정처 내 헌법연구팀과 헌법대응팀 가동 준비

- 헌법연구팀 ⇨ 자료 제공, 이론적 지원

- 다양한 개헌 방안 마련, 외부 개헌안에 대한 검토
- 홍보·대응 논리 개발, 논문, 서적, 시론 집필 및 검토



● 헌법대응팀 ⇨ 상시 동향 파악, 대응 전략 수립·집행

- 개헌 Process 파악 ⇨ 실제 개헌 논의 진행될 경우 예상 절차 파악, 접촉 면을 넓힐 필요
- 국회 개헌 모임 대응 준비 확대 ⇨ 의원 성향 파악·분류, 주도 세력 접촉 채널 신속히 확보
- 우군화 전략 실행을 위한 준비 ⇨ 헌법·정치학 교수, 국회 주변 개헌 관련 영향력 있는 인사 성향 파악·분류, 접촉·활용 계획 수립
- 홍보 전략 수립 ⇨ 사법부 개헌안에 대한 포괄적 홍보·집행 전략 수립



Ⅲ. 법무부 · 검찰

1. 현황

■ ① 이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총선 직후부터 사정 정국 진행 중**

- 총선 결과가 여권에 불리하게 나타날수록 그 강도는 거세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 매우 강한 강도로 진행 중

☑ 과거 정권 후반기 사정 태풍

- ▶ MB정부 ⇨ 공정사회 확립 ▶ 참여정부 ⇨ 대북 특검
- ▶ DJ정부 ⇨ IMF 청문회 ▶ YS정부 ⇨ 역사 바로 세우기

- 총선 이후부터 대선 정국까지 지속될 가능성 높음

■ ② **정○○ 법조 비리 수사 진행 중**

- 최○○·홍○○ 변호사 ⇨ 구속 기소

-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주도

- 롯데그룹 비리 수사로 발전 중

■ ③ **부패범죄특별수사단도 활동에 박차를 가함**

- 첫 번째 타깃으로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 중

- 남○○ 전 사장 측근에 대하여 영장 청구

☑ '우병우 사단'의 수사 라인과 첩보 라인에 대한 동시·완전 장악

- ▶ [수사 라인①] 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 우 수석이 아끼는 후배
- ▶ [수사 라인②] 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특수부 진두지휘) ⇨ 우 수석과 각별
- ▶ [첩보 라인①] 이○○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
- ▶ [첩보 라인②] 최○○ 국가정보원 2차장 ⇨ 우 수석의 서울법대 동기



2. 전망

▣ 무엇보다도 법조 비리 수사가 **사법 개혁 논의**로 이어지는 상황이 **가장 우려됨**

- 현재 '1억 수수 검사' 등 계속적으로 각종 의혹과 구설수가 제기되고 있어 국회 차원의 사법 개혁 논의 개시 우려

3. 대응 방향

▣ ① **자체적 자정 대책 마련**

- 지난 6. 16. 발표한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집행 필요

▣ ② **내부 구성원에 대한 자체적 단속 강화**

- 자칫 추가적인 사법부 구성원의 비리 문제가 불거져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위기 점검·관리 태세를 강화하여야 함

[끝]

개헌 정국과 사법부의 대응 방안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8. 7. 31.

법원 행정 처



개헌 정국과 사법부의 대응 방안

2018. 7. 31.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 논의 급부상

-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개원사를 통해 화두를 던진 데 대해 거의 모든 정파가 화답하는 형국

⇒ 19대 국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숨意를 살펴볼 필요 있음

▣ 개헌 논의는 종국적으로 실제 개헌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논의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이슈

- 누적되는 개헌 논의에서 사법부가 사수·탈환·상실하는 ‘권력 point’

⇒ 실제 개헌 진행 시 한순간에 ‘사법부 권력 지도’로 확정되는 것

- 급변 논의의 심도를 예측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전력투구할 필요 있음

▣ 개헌 정국 하에서 신중한 현황 분석과 전망,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기임

- 사법부 外的 변화가 중심 ⇒ ①정치권과 ②언론 상황 분석에 중점을 둬

[2016년 전체 일정 개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법부 외부	4.13 총선		원 구성 司正 정국		여당 전당대회			본격 대선 국면 돌입		
사법부 내부	사법행정위 출범		상고 법원 19대 추진 국회 종료		대법관 제청·임명					

2. 정치권 동향

가. 개요

■ **키워드** ⇨ ① **백가쟁명식 견해 표출**, ② **동상이몽의 한계 극명**

● ① 개헌 자체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긍정적 여론이 지배적

⇨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뚜렷한 견해차

☑ 개헌 필요성에 관한 지배적 여론

▶ 20대 국회의원 여론조사(6. 19. 연합뉴스)

⇨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3%(300명 가운데 250명)

▶ 일반 국민 여론조사(6. 16. 리얼미터) ⇨ '개헌론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69.8%

☑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견해 차이 큼

▶ 20대 국회의원 여론조사(6. 19. 연합뉴스)

⇨ 4년 중임제 46.8% vs. 의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 38.4%(의원집정부제 24.4%, 의원내각제 14.0%)

● ② 하지만 개헌 자체에 대한 진정성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 논의를 활용하고 있을 뿐 ⇨ 분석과 전망에 중요한 포인트

나. 표면적 상황

■ ① **국회의장** ⇨ **가장 강력한 의지 표명**

● 국회의장이 촉발한 개헌 논의 ⇨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

- ① 6. 13. 제20대 국회 개원사 “개헌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 정세균 국회의장 제20대 국회 개원사(6. 13.)

▶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됩니다.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 ② 6. 14.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

☑ 연합뉴스(6. 16.), 개헌 마중물 자임한 입법부 수장 “과감해질 때 됐다”

▶ 정 의장은 개헌론자인 우윤근 전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도 “이런 문제(개헌론)도 감안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③ 6. 16. 기자간담회, “가능하면 20대 전반기에 개헌”

-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제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일단락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 ⇨ 단순한 논의가 아닌, 과감한 실행 주문

☑ 연합뉴스(6. 16.), 개헌 마중물 자임한 입법부 수장 “과감해질 때 됐다”

▶ 정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진행한 취임 간담회에서 “개헌논의가 쪽 돼 왔는데 그냥 논의만 할게 아니라 매듭지을 때가 됐다”,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개헌논의도 과감해질 때가 됐다”며 강력한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다음 대선 후에 개헌을 할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 내에 개헌을 할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 ④ 6. 26. 연합뉴스 인터뷰, “개헌 멀티트랙론” 제시하며 실천 방안 구체화

- ① 청와대의 개헌 블랙홀론에 맞서 개헌 멀티트랙론 제시
- ② 궁극적으로는 개헌특위를 설치할 것이라는 의지 표명

☑ 연합뉴스(6. 26.), 정의장, 차대통령 '블랙홀론'에 맞서 '개헌 멀티트랙론'

▶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 추진을 위한 논리로 '멀티트랙론'을 들고 나왔다. 민생과 외교·안보를 챙기면서도 개헌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그는 특히 “국회나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할 때 개헌에만 몰두하고 다른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너무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국회가 개헌을 논의하면서 민생을 챙기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6. 26.), 정의장 “차대통령, 개헌입장 밝히는게 순리...국회특위 빨리 설치”

▶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한 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순리다. 그게 정상”이라고 말했다...자신의 개헌론 제기에 대한 청와대 반응과 관련, “아직은 없다”면서도 “전에는 개헌 얘기가 나오면 청와대가 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는 게 그나마 다행 아닌가. 국민 여론과 국회의원들의 공감대에 대해 청와대도 좀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 의장은 특히 “개헌은 20대 국회에서 꼭 감당해야 할 과제”라며 “국회 개헌특위 설치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담을 열어 특위 설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섭단체간 특위 설치 합의가 빨리 이뤄지면 **개헌특위**로 직행하고, 그게 쉽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 차원에서 **의장 직속 자문 기구**를 만들어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취합하는 노력을 하면서 **특위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며 "**징검다리(의장 자문기구)**를 거칠 것이냐 **직접(특위로)** 갈 것이냐는 교섭단체 대표들과 소통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⑤ 6. 30. 여야 3당 원내대표 초청 만찬에서 **개헌특위 구성 제안**

- ❖ 더민주, 국민의당은 찬성하였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 도출 실패**
- ❖ 향후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기구** 설치할 가능성 높음

☑ **연합뉴스(6. 30.), 여야 "불체포특권 포기"...의장직속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
▶ 이번 회동에서 **국회 개헌특위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정 의장이 제안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기구**부터 설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 설치 문제**에 대해 "**아직 공감대가 완벽하지 않아 어떻게 할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 특위 설치가 지연될 경우 **징검다리 형태로 의장 직속 자문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 ② 더민주 ⇨ **찬성론 우세 속에 다양한 의견 표출**

- **김종인 대표(의원내각제 지지)**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6. 21.)**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은 자주 지적됐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 혼란만 초래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개헌은 정치 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 **우상호 원내대표** ⇨ 현실론, "**개헌은 불가능**"

☑ **이데일리(6. 26.), 우상호 "개헌 어렵다...문재인, 박원순, 김부경, 안희정 대선 나올 것"**
▶ 우 원내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국회가 개원했고 19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권한 내려놓기가 불가능할 것이라 본 것이다. 그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자기 임기를 줄이겠는가. 국회의원들이 자기 임기를**



줄이는 데 동참하겠는가"라며 "특권도 안 내려놓는데 임기 내려놓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 문재인 ⇨ 4년 중임제 지지

☑ 한겨레(6. 15.), 개헌논의 공론화...문재인 "중임제" 김무성 "이원집정부제"
문재인 전 대표는 이미 2012년 대선 당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키고, 국무위원 인사권을 총리에 이양하는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 전 대표 쪽 관계자는 "당시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된다. 여권 일각의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에는 (집권을 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게 문 전 대표 생각"이라고 전했다.

● 박원순 ⇨ 4년 중임제 지지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강조

☐ [3] 국민의당 ⇨ 찬성론 우세하나 안철수는 부정적

● 박지원 (의원내각제지지) ⇨ "부부익부", "개헌특위 구성 찬성"

-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헌 주장에 6. 16. "조조익선"으로 화답
- 김종인 대표의 개헌특위 구성 제안에 6. 21. "찬성" 의사 표명

☑ 중앙일보(6. 16.), 박지원 "개헌논의는 조조익선...미래를 향한 문 열릴 것"
▶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개헌논의는 조조익선(부부익부 ·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이다"고 16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헌론 논의를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해준다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 연합뉴스(6. 21.), 김종인 '개헌특위 제안'에 엇갈린 반응...혐로 예고
▶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 김종인 대표와 개헌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며 "(김 대표가) 특위 구성을 검토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나도 찬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위 구성은 국회의원만 할지, 국회의원에 외부인사를 추가할지, 또는 외부인사가 할지 그런 세부적인 문제를 협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철수 ⇨ "국민 동의 구하는 것이 순서"

☐ [3] 여권 ⇨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관심과 신중론 양립

● 김무성 ⇨ 6. 20. "개헌은 내 소신", 분권형 대통령제 지지



- 남경필 ⇨ 이원집정부제 + 수도 이전·지방 분권
- 유승민 ⇨ 4년 중임제 / 이재오 ⇨ 개헌 전제 창당 추진
- 정진석 원내대표 ⇨ 6. 20.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반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지 않아야”, 개헌 논의 위협

■ 4 BH ⇨ **반대 입장 유지 속에 미묘한 기류 변화**

- 표면적 입장 ⇨ 반대 입장 유지
- 19대 국회 당시 ‘개헌 블랙홀’論 ⇨ “개헌이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 들여도 상관없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 4. 26. 총선 직후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 “개헌은 다음에 경제가 살아났을 때, 국민 공감대를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 **‘참 나쁜 대통령’論**
 ▶ 2007. 1.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원색적 비난을 가한 바 있음 ⇨ 향후에도 VIP가 개헌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眞朴 의원들 움직임 ⇨ 미묘한 기류 변화
- 정종섭 ⇨ 6. 16. 개인 블로그,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다. 이면적 숨意

■ 1 **국회의장** ⇨ **대권 잠룡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강한 정치적 모티브**

- ‘대권으로 가는 우회로’로서 국회의장직을 택했다는 일각의 분석 있음
- 임기 동안 개헌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를 통해 획득한 강한 정치적 추진력·이미지를 바탕으로 대권 레이스에 재도전하고자 한다는 예측
- 개헌론은 역대 국회의장의 개원사 단골 메뉴였던 것이 사실이나, 정 의장의 경우 그 추진 의지가 남다름 ⇨ 최소한, 대선후보로서 이루지 못한 정치적 성취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개헌 추진 예상

■ ② 야권 ⇨ 미래 권력의 “분점 vs. 독점”의 대립·갈등 구도**● 김중인·박지원 ⇨ 킹메이커가 아닌 실세 권력 분점 희망**

- 김중인 ⇨ 오는 8월로 대표 임기 종료된 후에도 경제민주화 등 자신의 주요 정책 추진 희망, 문재인 대표와 갈등·불신도 여전함 ⇨ 지난 총선에서 보인 바와 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원내각계 하에서 권력 지분을 확보하면서 정치적 뜻을 펼치기를 희망할 듯

- 박지원 ⇨ 제3당의 한계와 안철수의 집권 실패 우려 등에 대한 고려가 의원내각제 지지의 바탕일 듯

● 문재인 ⇨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로서 권력 독점 희망

-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 중임제만을 지지하고 있음

■ ③ 여권 ⇨ 독자적 정권 재창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정치공학적 고려·계산**●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론 ⇨ 이원집정부제를 바탕으로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검토되고 있는 듯함****● 반드시 반기문 카드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쇠락하거나 여전히 군소 후보 처지를 면치 못하고 있는 여권 잠룡들 ⇨ 분권형 대통령제가 집권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음**

- 이원집정부제를 포함한 분권형 대통령제 ⇨ 과거 DJP연합과 같이, 향후 국민의당을 비롯한 각종 정파와 제휴하는 데에 중요한 밑그림으로 가능

- ex. 남경필의 수도 이전·지방 분권론 ⇨ 지역 세력을 포함하여 더욱 넓은 제휴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의도로 보임

● 다만, 총선을 통해 당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친박계 ⇨ VIP의 의중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주시하고 있음



■ 4 BH ⇨ 퇴임 후 대비, 레임덕 관리, 업적 관리, 경제 살리기 등의 다
면적·복합적 관점에서 고심

- VIP는 원래 反개헌론자가 아님 ⇨ 한나라당 부총재 시절과 야당 대표 시절엔 ‘가장 강력한 개헌론자’로 통했음
 - 4년 중임제는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함
- 하지만, 과거의 언행 부담(‘참 나쁜 대통령’論)과 현재의 경제 상황, 극한의 레임덕 발생 위험 등 ⇨ 적극적·공식적으로 개헌 논의를 주도해 나가기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입장임
- 그러나 한편, 정권 재창출을 통한 퇴임 후 대비, 빈약한 업적 관리 측면 ⇨ 개헌 추진은 여전히 매력적인 카드인 것도 사실임
 - 특히 ‘권력 상실 후의 배신’에 대하여 극도의 트라우마를 가진 VIP ⇨ 결국 퇴임 후 영향력 유지에 더욱 집착할 것이고, 이러한 스타일은 지난 총선에서 친박 공천을 위한 각종 무리수로 입증된 바 있음
- 여권 내에 유력 차기 대권주자가 부각되지 않는 현실 ⇨ BH가 개헌 찬성으로 급선회할 가능성 있다는 분석도 존재
- 이러한 와중에 ‘진박’ 정종섭 의원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 있음

☑ 정종섭은 VIP의 개헌 아바타?

- ▶ 오래 전부터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해온 헌법학자
- ▶ 애초부터 VIP의 ‘개헌 밀명’을 띠고 국회에 들어온 인사로 보는 시각 있음

3. 주요 언론의 입장

조선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신중론	신중론	(기본) 찬성 (일부) 신중	찬성론	조건부 찬성	반대

▣ 조선일보 ⇨ 신중론

- [분석] ▲정세균 국회의장이 6. 13.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기 前까지는 분권형 개헌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칼럼이 게재되다가, ▲6. 13. 이후부터는 신중론(사실상 개헌 반대)으로 방향 전환

- 위와 같이 방향 전환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측해 볼 수 있음

- ①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국회 주도 개헌 논의가 활성화될 경우,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의회 권력이 강화되고, BH의 레임덕은 가속화되어 현 정부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음
- ② 현 상황에서 개헌이 진행될 경우 가장 채택 가능성 높은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인데, 마땅한 대선주자가 보이지 않는 여권에는 유리할 것이 없음 ☞ 개헌 논의에 동참하였는데,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력 주장할 경우 이를 막을 명분도 부족
- ③ 여권의 대선주자가 부각되거나, 이원집정부제가 유리하다는 확신에서는 순간이 도래할 때까지는 “신중론”을 통해 숨고르기를 해야 함

- ① 김○○ 고문 ☞ 6. 7.자 칼럼을 통해 분권형 개헌과 정계 개편 제의

조선일보 김○○ 칼럼(6. 7.), “분권형 개헌과 정계 개편”

▶이제 분권형 개헌을 검토할 때다. ... 개헌을 추진하려면 정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새누리당의 친박과 더불어민주당의 친노는 그들의 '다음 권력'에 대한 욕심과 기득권 때문에서라도 개헌에 찬동할 리가 없다. 친박의 영수인 박 대통령의 '소신'과 친노의 수장 문재인 전 대표의 '야심'은 권력 구조의 재조정 또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을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문제는 그들을 제외한 정치권 전부가 대동단결해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 [2] 6. 15.자 사설을 통해 개헌에 대한 신중론 피력

- “① 국민의 폭넓은 동의, ②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 권력 구조 문제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이 초래할 정파적 분열 경고
- 정세균 국회의장이 6. 13.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자 그에 대해 신중론 제기

☑ 조선일보 社說(6. 15.), “개헌, 충분한 시간 갖고 차분하게 논의해야”

▶ 내각제나 이원정부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같은 권력 구조 문제를 먼저 꺼냈다가는 정파적 분열이 전 국민적으로 격화되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것이다. ... 시한 정해놓고 밀어붙이듯 개헌을 논의할 일은 아니다. 개헌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얻어 천천히 결정해나가야 한다.

● [3] 6. 22.자 사설에서도 재차 신중론 피력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6. 21.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자, 그 다음날 사설에서 곧바로 개헌에 대한 신중론 다시 피력

☑ 조선일보 사설(6. 22.), “개헌특위, 국회만이 아닌 범국민적 기구로 만들어야”

▶ 대통령 중임제나, 내각제나 이원정부제나 같은 권력 구조 문제에만 관심이 국한되어 있을 뿐 바로 이 시점에 개헌이 왜 필요한지, 개헌을 한다면 얼마나 광범위한 내용이 되어야 할지 같은 '개헌의 본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지금 개헌 논의에 들어간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 아래의 29년을 총결산하는 작업**이 앞서야 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민족사적 작업**이라는 생각도 있어야 한다.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기본권이나 복지·환경, 경제 양극화 등에 대한 전 사회적 논의도 필수적**이다. 그래야 국민 다수가 환영하는 가운데 개헌을 끝내고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에너지도 얻게 될 것이다.

▶ 그러자면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다양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범국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뒤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의 전유물처럼 진행된다면 정작 개헌에 이르지도 못하고 가까운 기회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특히 **다음 대선에서 권력을 쥐려는 사람들의 흥정과 거래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4] 강○○ 논설고문 6. 25.자 칼럼에서 개헌반대론에 가까운 의견 피력

☑ 강○○ 논설고문, 조선 6. 25. “헌법은 연주자 실력 따라 다른 소리 내”

▶ 헌법과 그 안의 권력 구조는 악기(樂器)와 같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낸다. **지금의 개헌 논의는 연주자의 질(質)이 달라지기 힘드니 악기라도 바꿔보자는 주장**이다. 현행 헌법 속 국무총리는 연주자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멋진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무총리 소리를 들어봤다는 사람이 없다. 입을 달아주지 않았으니 총리 탓을 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악보(樂譜)대로 헌법을 연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연주자가 악보의 지시와 달리 연주하면 악기를 바꿔보야 소용이 없다. 개헌 논의의 초점을 일단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헌법대로 헌법을 운용하도록 하느냐에 맞춰야 한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드러나면 악기를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자연히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

- ⑤ 안○○ 서울대 법전원 명예교수 7. 4.자 칼럼 ☞ 기본적으로 신중론
- 개헌은 국민의 개헌 열망을 담아 정석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신중론
- 다만, 청와대에 개헌 논의를 위촉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점이 특징

☑ 조선일보 안○○ 서울대 명예교수 칼럼(7. 4.), “개헌의 시기, 개헌의 정석”

▶ 개헌, 필요한 시점에 왔는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진지한 논의 끝에 수순을 밟아 정석대로 진행해야 한다.** 우선 '왜 헌법을 바꿔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해야 한다...** 현재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로는 국민의 일상적 행복을 증진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진지한 논의와 설득력 있는 대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지역 격차, 빈부 격차, 세대 갈등, 비정규직, 사회 분열, 남북의 평화공존 등등 모든 문제를 어떻게 개헌을 통해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 **이 문제에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현직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위촉시켜서는 안 된다. 초연한 자세로 잔여 임기 동안 국정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강력한 개헌의 장벽은 청와대다. 개헌 논의의 물꼬가 트이면 모든 국정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이제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라와 국민의 장래를 생각하기 바란다.

■ **연합뉴스 ⇨ 신중론 (조선일보와 유사한 입장)**

- ① 6. 19. 연합시론을 통해 개헌에 대한 신중론 제기
- 조선일보와 동일한 논리로 신중론 제기 ☞ 조선일보와 입장 공유 내지는 공동 보조를 취한다는 인상



☑ **연합시론(6. 19.) “의원 대다수 찬성한 개헌,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

▶ 문제는 개헌에 국민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냐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국회 중심으로 이뤄지는 개헌 논의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먼저 정치권이 국민의 불신을 씻는 노력을 하고 개헌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 물론 개헌을 하게 되면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시대적 변화에 맞는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이 되어 할 것이다. **개헌을 통해 국가운영의 틀을 어떻게 바꾸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어떤 가치를 구현하려는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 ② 6. 20. 김○○ 논설위원 ☞ **사실상 개헌 반대론 피력**

☑ **연합뉴스 김○○ 칼럼(6. 20.), “개헌론과 정치의 실패”**

▶ 개헌의 명분도 투명하지 않다. 헌법 개정은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하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다. **지금보다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담지 못한다면 헌법을 바꿀 이유가 없을 것이다.**

▶ **정당이나 개인의 이해관계나 욕망 때문에, 혹은 대통령의 권력을 빼앗아 의회 권력을 강화하자는 논리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찬성을 얻기 어렵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의 권력이나 의회의 권력이나 그게 그거다. 통일 이후를 내다본 국가의 백년대계나 국민복에 복무하지 않는 개헌론은 공허하다.

☐ **중앙일보 ⇨ 기본적으로 개헌 논의 찬성 (일부 반대 견해 존재)**

- [분석] ▲초기에는 사실로 개헌 찬성론을 피력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개헌찬성론”과 “개헌신중(반대)론”이 혼재되고 있음
- “개헌신중(반대)론”은 보수 성향이 강한 논설위원(예: 김○)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① 6. 14.자 사설 ☞ **개헌 찬성론 피력**

☑ **중앙일보 사설(6. 14.), “정세균 의장의 개헌론에 주목하는 이유”**

▶ 우리의 국력과 국민의식 수준을 감안할 때 개헌 논의로 경제나 민생이 소홀해질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약화될까 봐 개헌 논의를 틀어막은 측면도 있다. 임기말의 야당도 집권하면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력을 향유할 수 있다는 계산에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식의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개헌은 영영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현 정부의 임기 중 개헌 논의의 골든타임이 있다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올해 말일 수 있다. 대선 예비주자들이 이 문제를 던져놓고 공론의 장을 만들거나 아예 집권 공약으로 내거는 것도 방법이다.**

● **② 장○ 중앙대 교수(정치학) 6. 20.자 칼럼에서 개헌 반대론 피력**

☑ 중앙일보 장○ 교수 칼럼(6. 20.), “개헌론, 그 깊은 괴리감에 대하여”

▶ 시민들이 겪는 삶의 위기와 여의도 정치권에서 말하는 위기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을 때 위기는 거대한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트럼프 현상이나 서유럽 극우정치의 약진은 시민적 삶과 유리된 대의제 정치가 쏟아내는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다. **고장 난 대의제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우리 정치는 시민들 삶의 위기와 정치권이 말하는 위기의 괴리부터 좁혀야 한다. 개헌은 그 다음 일이다.**

● **③ 김○ 논설위원 6. 22.자 칼럼에서 개헌 반대론 피력**

☑ 중앙일보 김○ 논설위원 칼럼(6. 22.), “개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4개”

▶ 4년중임·내각제·이원집정부제 모두 불안과 위험을 안고 있다. 미래 확산 지수가 50을 넘기 힘들다. 그런데도 개헌을 서둘러야 하나. 사회가 성숙할 때까지, 그래서 확산 지수가 충분히 높아질 때까지 5년 단임제를 잘 운용하면 안 되는 걸까. 현명한 대통령을 뽑고 사회가 도와주면 안 되나. 제도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닌가. ... 통일 교섭 단계에 들어서면 남북은 통일헌법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서독도 90년 동독을 흡수 통일하면서 헌법을 고쳤다. 그렇다면 남한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지금 개헌할 게 아니라 얼마 후 아예 통일헌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 물론 헌법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전에 4개의 의문이 풀렸으면 좋겠다. 확산 없이 새 길을 떠날 수는 없다.**

● **④ 박○○ 대기자 6. 23.자 칼럼에서 개헌에 대한 신중론 피력**

☑ 중앙일보 박○○ 칼럼(6. 23.) “특권 국회’ 개헌론, 가망 없는 게임”

▶ **국회의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 추진력은 내부에서 생산해야 한다. 달라진 국회의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출발은 의원 특권의 폐기다. 정 의장은 ‘면책(免責)과 불체포 특권’ 포기를 역설했다. **특권 내려놓기가 개헌의 진정성 확보 조건이다.**

● **⑤ 박○○ 연세대 교수(정치학) 6. 24.자 칼럼에서 개헌 찬성론 역설**

☑ 중앙일보 박○○ 교수 칼럼(6. 24.), “헌법 개혁이 왜 절실한 민생개혁인가?”

▶ 결정적 국면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20대 국회가**, 엄중한 소명의식을 갖고 시민사회와 공동개헌기구를 설립하여 권력분산·의회국가·복지국가로의 **헌법개혁**



을 성취하길 소망한다. 그리하여 함께 민생개혁과 국가회복의 정초를 '다시' 놓자.

● [6] 김○○ 前 미국 연방하원 의원 6. 27.자 칼럼에서 개헌 반대론 피력

☑ 중앙일보 김○○ 칼럼(6. 27.), “지금이 개헌 추진할 때인지 국민투표로 묻자”

▶ 이제 막 국회가 시작된 마당에 또 다른 권력 다툼의 소지가 큰 개헌을 하필 지금 해야 하는지를 국민투표로 국민에게 직접 물어 보자는 얘기가. 헌법 72조에 있는 국민투표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도 다른 선진국처럼 국민투표를 통해 물어 보자. 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개헌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7] 이○○ 전 법제처장 7. 4.자 칼럼에서 개헌 찬성론 피력

☑ 중앙일보 이○○ 전 법제처장 칼럼(7. 4.), “시대는 개헌을 요구한다”

▶ 개헌 시기와 관련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연말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는 안을 생각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의 개헌은 국민들의 오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아일보 ⇨ 기본적으로 개헌 찬성 (일부 반대 견해 존재)

- [분석] ▲초기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국회 주도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논설위원(예: 송○○) 중심으로 개헌 반대론도 제기되고 있음

● [1] 6. 14.자 사설에서 국회 주도의 개헌 찬성론 피력

☑ 동아일보 사설(6. 14.), “20대 국회, 87년 체제 바꿀 개헌 논의 시작해보라”

▶ 국회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개원 연설에서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대해 ‘국정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후보처럼 강력한 미래권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선 개헌을 추진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은 차기 주자가 안 보이는, 사실상 불임(不妊) 상태다. 친박(친박근혜) 계에서 끊임없이 ‘반기문 대통령, 친박 실세 총리’를 염두에 둔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이 나오는 이유다. 개헌론을 제기한 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개헌을 전제로 한 ‘대선 결선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대통령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임기 후반 대통령의 개헌 추진은 ‘권력 연장 의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만큼 20대 국회 주도로 개헌의 큰 그림을 논의해 볼만하다.

● [2] 박○○ 논설위원 6. 16.자 칼럼에서 적극적인 개헌 찬성론 피력

☑ 동아일보 박○○ 논설위원 칼럼(6. 16.), “박 대통령이 역사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 개헌은 대통령이 나선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국회에서 추진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정도로 입장 표명만 해도 엄청난 동력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개헌에 최적화된 정치상황은 다시 오기 어렵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박 대통령은 물론 기성세대는 역사와 후손에 죄를 짓는 것이다.**

● [3] 송○○ 논설위원 6. 29.자 칼럼에서 국회 주도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 피력 ☞ 동아일보 6. 14.자 사설에 명백하게 반하는 내용의 칼럼

☑ 동아일보 송○○ 논설위원 칼럼(6. 29.), “국회 주도의 개헌에 반대한다”
▶ 국회가 움직이면 대통령도 움직여야 한다. 대통령은 나라의 현자(賢者)들을 모아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협치(協治)라는 번드르르한 포장재로 내각제로 가는 길을 닦고 있는 국회에 개헌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 **국회는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는 대(大)변화를 감당할 전문성도 없는 데다 국회의 저열한 지적 수준과 책임 의식, 특권 집착과 갑질 관행을 고려하면 내각제는 우리나라에는 국가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 [4] 박○○ 논설위원 6. 30.자 칼럼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헌을 주도할 세력이 없음을 지적

☑ 동아일보 박○○ 논설위원 칼럼(6. 30.), “우리 안의 브렉시트”
▶ 87년 헌법은 민주화라는 대업(大業)을 이루고 이제 수명이 다했다고 나는 본다. **다들 ‘5년 단임제의 폐해’를 말하지만 눈앞의 이익에 빠져 개헌을 주도할 세력도, 지도자도 보이지 않는다.**

■ 한겨레 ⇨ 조건부 찬성

● 6. 17.자 사설 ☞ 개헌 자체에는 찬성하되,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

- 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② 권력구조 개편 차원을 넘어서야 하며, ③ 실질적 분권 및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고, ④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네 가지 조건

☑ 한겨레 사설(6. 17.), “개헌의 전제조건과 원칙들”
▶ **국가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자세**가 없으면 아예 개헌을 추진하지

않는 편이 낫다. 덧붙여, 이제는 **청와대도 개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시점**이 됐다. **'블랙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도,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에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다만 집권 연장 등의 정략적 목적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경향신문 ⇨ 반대**

● **[분석]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이 명확함**

-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은 **이른바 '진보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됨
- 내부적으로는 **정당식 비례대표 명부제**를 전제로 한 **독일식 내각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임 ⇨ 선거제 개편 전제로 한 개헌론의 입장인 듯

● **① 6. 16.자 사설에서 개헌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힘**

☑ **경향신문 사설(6. 16.), "시민은 살아남기도 힘겨운데 국회는 개헌이 우선인가"**
▶ 여야는 말 따로, 행동 따로다. 민생 현안이 시급하다더니 개원하자마자 개헌 타령이 나 하고 있다. 지금 서울 강남역과 구의역, 경기 남양주, 경남 거제에서 시민이 죽어가고 있다. '우연히' 살아남은 사람들도 먹고살기 어려워 고통받고 있다. **권력 구조를 바꾼다고 달라질 게 뭘가.** 현 정권의 집권 연장이나 이른바 지역 맹주들의 정치생명 보호 외에 무슨 명분이 있나. **개헌론은 시기도 내용도 적절치 않다. 국회는 당장 개헌론을 접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부축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 **② 이○○ 성공회대 교수 6. 27.자 칼럼에서 개헌 반대 입장 밝힘**

☑ **경향신문 이○○ 성공회대 교수 칼럼(6. 27.), "지금 이 개헌논의를 할 때인가"**
▶ 부정적으로 보자면, 현재처럼 방향이 불분명한 개헌논의는 안팎의 위기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할 의지와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야권은 총선을 통해 대책 없이 위기만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부여받았다. 야당이라는 조건에서 당장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은 국민도 알고 있다. 그러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여줘야 한다. **적어도 당분간은 개헌논의가 국민의 절박한 요청을 수렴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없다.**

4. 설문조사 결과

가. [연합뉴스] 국회의원 상대 설문조사 (6. 19. 발표)

1) 개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 상대로 설문조사 ☞ 전원 답변

2) 설문조사 결과

▣ '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답변 내용

- 83.3%(250명)이 '그렇다'고 답변

● 정당별 분포

- [새누리당] 77.0% (126명 중 97명)

- [더민주당] 86.9% (122명 중 106명)

- [국민의당] 92.1% (38명 중 35명)

▣ 개헌 시기

● 답변 내용

- “내년 대선 전 개헌 완료” 47.6% (119명)

- “대선 공약과 연계해 차기 정부가 개헌” 41.2%(103명)

- “2년 이상 국민 대토론 거쳐 2020년 총선 전” 28명(11.2%)

● 정당별 응답률

- [새누리당] "대선전" 36.1%, "차기정부" 45.4%

- [더민주당] "대선전" 56.6%, "차기정부" 35.8%

- [국민의당] "대선전" 51.4%, "차기정부" 48.6%

- [정의당] 개헌에 찬성한 5명 모두 "현 정부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졸속 개헌은 안 된다" 등의 이유를 들며 대선 이후 개헌해야 한다고 밝힘

■ 선호하는 권력구조

● 답변 내용

- 대통령 4년 중임제 46.8%(117명)
- 의원집정부제와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 24.4%(61명)
- 의원내각제 14.0%(35명)

● 정당별 분포

- [새누리당] 대통령 4년 중임제 46명(47.4%), 의원집정부제 23명(23.7%), 의원내각제 10명(10.3%)
- [더민주당] 대통령 4년 중임제 55명(51.9%), 의원집정부제 29명(27.4%), 의원내각제 13명(12.3%)
- [국민의당] 대통령 4년 중임제 14명(40%), 의원내각제 9명(25.7%), 의원집정부제 6명(17.1%)
- [정의당] 의원내각제 3명, 의원집정부제 1명,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함 1명

■ 개헌, 선거제 개편 병행

● 답변 내용

- 선거제 개편 병행 찬성 = 164명(개헌 찬성과 250명중 65.6%)
- 병행 반대 = 72명(28.8%)

● 정당별 입장

- [새누리당] 병행 찬성 44.3%, 반대 47.4%
- [더민주당] 병행 찬성 77.4%, 반대 18.9%

- [국민의당] 병행 찬성 80.0%, 반대 20.0%
- [정의당] 설문에 참여한 의원 5명 병행 찬성

3)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 개헌의 필요성 ☞ 19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이번 설문조사 결과 ☞ 250명이 개헌 필요성 인정
- 19대 국회 설문조사 결과(2014. 10. CBS 전수조사) ☞ 231명 개헌 찬성
 - 대통령 4년 중임제든 내각제든 지금 논의되는 모든 개헌은 대통령 권력을 약화시키고 국회 권한을 키우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라는 해석 존재(한겨레 6. 19.)

■ 설문조사 결과만으로는 실제 개헌이 이루어질지 여부 불투명

- 개헌에 대한 찬성 의견 ☞ 원론적인 공감만 표현한 경우도 적지 않음
- 일부 의원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비롯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바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이지 당장 개헌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 개진(한겨레 6. 19.)

나. [중앙일보] 국회의원 상대 설문조사 (6. 23. 발표)

■ 개요

- 의원 전원 상대로 설문조사
- 설문에 답변한 의원은 총 217명

■ 개헌 필요성

- 응답자 중 93.5%(203명/217명)가 개헌 필요성 긍정

■ 20대 국회에서의 개헌 실현 가능성

- 응답자 중 72.4%(157명 / 217명) 개헌 가능하다고 답변

- 응답자 중 26.2%(57명 / 217명) 개헌 불가능하다고 답변

■ 각 정당별 개헌 찬성률

- 새누리당: 응답자 중 91.3% 찬성(84명 / 92명)
- 더민주당: 응답자 중 95.3% 찬성(81명 / 85명)
- 국민의당: 응답자 중 97.0% 찬성(32명 / 33명)

■ 통치구조별 선호도

- 4년 대통령 중임제: 62.2%(135명 / 217명)
- 이원집정부제: 16.1%(35명 / 217명)
- 의원내각제: 11.1%(24명 / 217명)
- 5년 대통령 단임제: 6%(13명 / 217명)

다. [법률신문] 로스쿨 헌법 교수 상대 설문조사 (6. 27. 발표)

■ 개요

- 전국 25개 로스쿨 재직 헌법 교수 86명 대상 전화 설문조사
- 50명이 응답

■ 헌법 개정 필요성

- 개헌 필요 84%(42명)

■ 개헌 범위

- 전면 개정 필요 73.8%(31명)
- 권력구조 개편 위한 원포인트 개헌 26.2%(11명)

■ 개헌 시기

- 내년 대선 전 45.2%(19명)
- 기타 의견 33.3%(14명)



- 대선 공약과 연계해 차기 정부가 개헌 21.4%(9명)
- **권력구조 개편 방향**
 - 4년 중임제 33.3%(14명)
 - 이원집정부제 28.6%(12명)
 - 대통령 5년 단임제 유지 9.5%(4명)
 - 의원내각제 2명(4.8%)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통합 여부**
 - 현행대로 양 기관 분리 운영 90.5%(38명)
 - 통합 1명, 기타 3명

5. 전망

가. 분석 기준

▣ 두 단계의 수준에서 검토 필요

⇒ ① 실제 개헌안 발의·통과 가능성, ② 개헌 논의 실질적 진행 가능성

- 개헌 논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사법부, 특히 사법행정 당국으로서는 최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특히 현재와 같은 정국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러함

나. [①단계] 실제 개헌안 발의·통과 가능성 ⇨ 극히 희박함

▣ ① 대통령 주도형의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

- 가장 효율적인 방식의 개헌 추진이 불가능 ⇨ 국회 주도형의 개헌에는 1년 6개월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임

▣ ② 개헌의 범위, 통치구조 등에 관한 공감대도 전무

- 통치구조에 관한 지배적 합의가 없어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도 말처럼 쉽지 않음 ⇨ 통치구조 외에도 개헌 수요가 널리 제기되고 있어 이른바 ‘포괄형 개헌’, ‘생활형 개헌’ 요구를 외면하기도 어려움

▣ ③ 현실적으로는 임기 불일치 해소 문제를 넘어서기 어려움

- 개헌 명분의 하나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 문제를 맞추기 위한 임기 단축 문제 ⇨ 양측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

☑ 중앙일보(6. 27.) 김종인 대표 인터뷰 中

▶ (김종인 대표) “20대 국회 초반에 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바꾼 헌법 하에 치르면 물론 좋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찬성할 리 없다. 20대 국회 말에 가서 하면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되지만 내년에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 뒤야 한다. 300명이 결심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결심이 더 쉽지 않을까? 그의 애국적 결단이 서면 가능한 일이다.”

■ ④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과 재계의 거부감 강함**

- 4년 중임제는 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정치 생명을 건 절실한 지지가 아님 ⇨ 그나마 정치적 생존을 위하여 진지하게 추진될 가능성 있는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는 국민과 재계의 심리적 거부감을 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다. [②단계] 개헌 논의 실질적 진행 가능성 ⇨ 상당히 높음

■ ① **개헌을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에 결부하는 세력 다수 존재**

☑ **개헌을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에 결부하는 세력**

- ▶ **국회의장** ⇨ 개헌 자체의 타결을 통한 정치 역량 과시·대권 재도전
- ▶ **새누리 친박계** ⇨ 반기문 대망론 등 대선 주자 부재 상황 타개책
- ▶ **여권 잠룡** ⇨ 제3세력과 합종연횡 모색에 유효
- ▶ **김종인·박지원** ⇨ 의원내각제 하에서 야권 맹주로 지분 확보·집권 가능

■ ② **VIP-BH가 굳이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논의 유도 가능한 상황**

- 정중섭 의원 등 일부 ‘진박’ 의원을 활용하면 ‘친박’ 의원들에게 朴心을 간접적으로 전달 가능 ⇨ 개헌 논의의 개시 여부, 진행 속도 등을 충분히 컨트롤 가능
- 따라서 VIP는 공식적으로는 ‘개헌 블랙홀’론을 고수할 가능성 높음

■ ③ **특히 야권 견제에 매우 유효한 카드**

- 결정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사안에서 절대 같은 배를 탈 수 없음 ⇨ 개헌 논의가 심화할수록 대립·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미래 권력의 “분점 vs. 독점”의 대립·갈등 구도**

- ▶ **김종인·박지원** ⇨ 킹메이커가 아닌 실세 권력 분점 희망
- ▶ **문재인** ⇨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로서 권력 독점 희망
- ▶ 지난 총선을 겪으면서 양자간에 반목과 불신의 앙금도 여전함



- 극심한 레임덕을 겪고 있는 VIP ⇨ 야권 유력 대선 주자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를 버리기 어려울 것임
 - 본인이 직접 나설 필요도 없고 계파 소속 의원들을 통하여 적당한 속도로 개헌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만일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려 한다면 개헌 논의가 상당한 심도를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될 것임

6. 대응 방안

가. [문제의식] 개헌 논의가 사법부에 미칠 영향

▣ 개헌 논의 ⇨ **최고 사법기관의 권한** 등에 대한 논의 필연적으로 포함

- [주요 이슈] ▲대법원장의 권한 약화(대법관 제청권, 헌법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관위원 지명권 박탈), ▲대법관 국회 선출제 도입, ▲대법원의 최고법원성 폐지, ▲대법관 증원,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 현재 이관, ▲재판소원 도입, ▲추상적 규범통제 도입, ▲선거에 관한 소송 현재 이관

▣ 사법부의 友軍 부족 ⇨ **사법부에 불리한 개헌안 작성 가능성 높음**

- 최고 사법기관의 권한, 기능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해 대다수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 ⇨ 사법부에 불리한 개헌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선제적인 치밀한 대비 필요

- 제19대 국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제20대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 있음

나. [방안①] 개헌특위 등 논의·자문 기구 구성 시 적극 대응

▣ 인적 구성의 중요성

- 과거 경험상 논의기구 인적 구성이 핵심임 ⇨ 구성 단계부터 관심 필요
- 특히 헌법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 그룹에 현재 편향적(사법부 비우호적)이고, 사법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인사 참여 시 인적 구성의 열세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 존재

▣ 논의 기구의 구성 형태

- ① 개헌 특위 (의원들만 참여)
 - 국회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 의결 필요

☑ **국회법 제44조(特別委員會)**

- ① 國會는 數個의 常任委員會所管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案件을 효율적으로 審査하기 위하여 **本會議의 議決로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委員會를 구성할 때에는 그 活動期限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本會議의 議決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 (외부전문가만 참여)**

-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 구성에 본회의 의결 필요 없음 ☞ 국회의장이 결단하면 곧바로 구성 가능

● **③ 중간 형태의 의장 직속 기구 (의원 + 외부전문가 참여)**

- 외부전문가 이외에 의원들도 참여하되, 의장 직속 기구로 하는 방안(우상호, 박지원 원내대표의 제안)

☑ **연합뉴스(6. 16.), “국회 개헌특위 설치될까...여야 엇갈린 3당 3색 반응”**

- ▶ 우 원내대표는 "특위의 형태가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해 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을 전제로 "**의원들이 들어가되 의장 직속 기구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말했다.
-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 전 의원의 제안에)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문제에 대해서 **꼭 국회의원만 (참여) 할 것인가, 외부인사만 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검토 의견]**

- 정세균 의장이 6. 30. 여야 원내대표 초청 만찬에서 **개헌특위 구성 제안**
☞ 더민주, 국민의당은 찬성하였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 도출 실패**
- 현재로서는 **②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외부전문가만 참여)** 또는 **③ 중간 형태의 의장 직속 기구(의원 + 외부전문가 참여)의 형태가 유력**

☑ **연합뉴스(6. 30.), 여야 “불체포특권 포기”...의장직속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

이번 회동에서 **국회 개헌특위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정 의장이 제안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기구**부터 설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 설치 문제**에 대해 "**아직 공감대가 완벽하지 않아 어떻게 할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특위 설치가 지연될

경우 징검다리 형태로 의장 직속 자문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 대응 전략

● ① 국회의장, 사무총장과의 컨택 포인트 마련

- [정세균 국회의장]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 의장 직속 자문기구 구성에 국회의장이 상당한 권한 행사
 - 19대의 경우 전체 자문위원 15명 중 9명을 국회의장이 선정

☑ 정세균 국회의장과 한○ 부장판사의 관계

- ▶ 한○ 부장판사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매우 아끼는 **고교(전주 신흥고)** 후배
- ▶ 법원행정처장이 6. 20. 정세균 국회의장 예방하였을 때, 정세균 의장이 **“상고법원 무산으로 한○ 부장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농담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함

- [우윤근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차장 등 친분 있는 행정처 간부 존재
 - 구성 단계에서 실무 총괄할 우윤근 총장과 긴밀한 관계 설정 노력

● ② 사법부에 우호적인 법조인 적극 추천

- 제19대 국회의 경우 권○○, 홍○○ 변호사 추천 경험 존재
- (예) 한○○, 이○○, 여○○ 변호사 등

● ③ 헌법학 교수 중 사법부에 그나마 우호적인 인물 추천

- (예) 이○○(중앙대), 한○○(중앙대), 이○○(서울대), 김○○(연세대) 교수

● ④ 헌법학 교수 대신 영향력 있는 정치학과 교수 적극 발굴, 추천

- [헌법학 교수들의 문제점]
 - 19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 헌법학 교수 대거 참여하여 사법부에 불리한 환경 조성된 경험 있음
 - 헌법학 교수들은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헌법재판소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인을 포함하여 학계 선후배, 동료들이 대부분 독일 유학파이고, 헌법연구원, 헌법연구원 경력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 헌법실무연구회, 한국헌법학회 등 각종 학술 모임은 위와 같은 헌법학 교수들의 ‘헌법재판소’ 中心의 ‘네트워크’를 더 強化시키고 있는 현실

- [정치학과 교수 발굴의 필요성]

- 정치학자 출신의 위원장 ☞ 헌법학 교수(김○○)가 위원장을 맡았던 제 19대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와 차별화 가능(제18대 때는 경제학자이면서 정치인인 김종인 대표가 위원장 역임)
- 헌법학 교수들의 주된 관심사는 헌법의 규범적 해석, 사후적 규범통제 등 미시적인 헌법해석학에 맞추어져 있음 ⇨ 그러나 현재의 헌법개정 은 ‘제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한 상황(‘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대한 프로젝트’) ⇨ 다양한 헌법 현실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탁 월한 자질을 보유한 유능한 정치학자가 헌법개정 작업의 전문성을 갖 춘 적임자 ⇨ 실제로도 현재 각종 개헌 담론은 정치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
-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지 급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 ☞ 새로운 헌법에 위와 같은 정신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정치학자의 참여가 필수
- 정치학과 교수들은 대부분 미국 유학과 ☞ 미국연방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사법제도에 대하여 친숙
- 헌법학계의 독일, 憲裁 中心의 촘촘한 ‘네트워크’로부터 자유로움
- 국회의원들과의 유대관계는 정치학과 교수들이 헌법학 교수보다 優越

- [정치학과 교수 발굴, 접촉, 추천 방안]

- 2016. 6. 7.자 “개헌 관련 주요 정치학자 현황” 보고서(기획조정실) 참조
- 접촉할 필요성 높은 정치학자 명단은 아래 <표> 참조

<개헌 논의 참여가 유력하여 접촉할 필요가 있는 정치학자 명단>

성향	이름	출생	현직	경력
새누리당	박○○	1954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미래한국헌법연구회(2008) 한국정치학회 회장(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2008)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2011)
	강○○	1961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미래한국헌법연구회(2008) 한국정당학회 회장(2010) 국회정치쇄신 자문위원회(2013) 헌법개정 자문위원회(2013) 한국정치학회 회장(2016) 한림국제대학원 정치경영연구소(2016)
	장○	1962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당학회 회장(2011) 헌법연구 자문위원회(2008)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2012)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201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2013)
	이○○	1965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2015) 새한국의 비전(2016) - 정의화 전 의장
더민주당	최○○	1961	한림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강연(2014)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2015) 국회 선거제도개혁자문위원회(2015) 한림국제대학원 정치경영연구소장(2016)
	박○○	1963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2008)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2011)
국민의당	김○○	1965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미래한국헌법연구회(2008) 국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2008)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2012) 안철수 새정치공동선언 협상팀(2012)
정의당	김○○	1963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당학회 회장(2014)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2015) 한국정치학회 부회장(2016) 정의당 외부 자문위원(2016)

다. [방안2] 개헌대응반 가동

▣ 개헌대응반의 목표

- 국회 내 개헌 논의 방향 전망 및 선제적 대응 필요 부분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 수립
- 현재와의 관계에서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위상 유지 ⇨ 재판소원 도입 등 법원 재판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시도 저지
 - [헌법재판소] 최근 간통죄 위헌 결정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이슈에 대한 진보적 결정으로 국민으로부터 획득한 긍정적 이미지를 토대로 개헌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 높음
- 헌법연구반과의 준별
 - 개헌 관련 법리 연구 ⇨ 헌법연구반
 - 관련 전략의 수립 ⇨ 개헌대응반

▣ 주요 점검 사항

- 제18, 19대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의 개헌 의견 및 논의 자료 정밀 검토
 - 제18대 국회의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제19대 국회의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개헌 의견 및 논의 자료를 기초로 개헌안 마련할 가능성 높음
- 국회의원, 외부인사 등 주요 인사의 개헌 관련 동향 분석
-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논의 기구 출범 시 이를 지원할 국회 내 실무부서 사전 파악 등 정보 수집
 - 전례에 비추어 보면, 법제실장, 법제총괄과장, 법제연구과장 등이 실무지원단에 참여

▣ 2단계 대응반 구성

- Ⅰ 사전대응단계



- 양형실장을 팀장으로 개헌 및 국회 관련 심의관, 전직 심의관, 국회 파견 판사 중심으로 콤팩트하게 구성 ☞ 팀장 포함 총 5인

- [팀장] 양형실장

- [팀원] ① 김○○ 前 사법정책심의관(前 헌법 담당), ② 문○○ 사법정책심의관(現 헌법 담당), ③ 김○○ 기획제1심의관, ④ 장○○ 국회 파견 판사

- ① 기존 자료 정리, ② 참여 가능 위원 성향 분석 후 추천 리스트 작성, ③ 현재, 국회 동향 파악

- **② 논의기구 본격 가동 단계**

- 대응반 확대 개편
- 여러 가지 버전의 개정안 준비 및 공론화시키는 방안 검토

- **개헌대응반(사전대응단계)의 업무분장**

구분	상세	주체	비고
개헌정국 현황 정보수집	국회/청와대/헌재 등 유관기관 동향 파악	양형실장	○ 개헌 주도 의원, 헌재재판관, 언론사 간부 등 고위급 중심
		국회 파견 판사	○ 의원 보좌관·비서관, 입법부 공무원, 기자 등의 실무자 그룹 중심 ○ 수시로 카톡방에 정보 제공
	언론보도 체크	사법정책실	○ 신문기사 스크랩·제공(매일)
	주요인사 개헌 관련 발언 정리, 분석	사법정책심의관	○ 위 신문기사 스크랩을 기초로 수시 업데이트
시나리오 작성	개헌정국 전개 예상 시나리오	김○○ 판사	○ 위와 같이 수집된 정보를 토달 예상 시나리오 작성
	개헌정국 대응 시나리오	기획1심의관	○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시나리오 작성
개헌안 연구	기존 단계별 개헌안 재정비	사법정책실	○ 사법정책실 1차 논의 실시(6. 21.)
	주요 쟁점별 대응 논리 정리	헌법연구반 사법정책심의관	○ 2016. 4.부터 제10-2기 헌법연구반 가동 중
	정파별 맞춤형 설명자료 작성	헌법연구반 사법정책심의관	
개헌 관련 주요인사	주요인사 컨택포인트 파악	양형실장	○ 국회(정치권), 학계, 언론 고위층



파악		국회 파견 판사 기획1심의관	○ 국회(정치권), 학계, 언론 실무자
	주요인사 컨택포인트 구축	기획1심의관	○ 사법부 구성원 전수조사 / 전담자 지정 필요
	개헌 논의 실무지원 조직 파악	사법정책심의관 국회 파견 판사	○ 개헌특위 /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로 구분하여 실무지원 조직 파악
	개헌특위위원회/ 국회의장 자문위원 후보군 검토	사법정책심의관	
	사법부 대변해 줄 외부인사 후보자 검토	사법정책심의관 기획1심의관	○ 원내/재야/헌법학계/기타학계 등으로 나누어 검토

<끝>

사법개혁 대비 TFT 최종보고서[사법행정 부분]

I. 개요

■ 논의 주제: 사법행정 부분인 인사, 검찰, 예산 사항

■ 논의 경과

- 2012. 12. 4.(화) 15:00 1차 회의
- 2012. 12. 6.(목) 15:00 2차 회의
- 2012. 12. 14.(금) 10:00 3차 회의
- 2012. 12. 15.(토) 10:00 4차 회의

II. 추진 아젠다

가. 개요

- 제18대 국회의 사개특위 당시 소극적 대응에서 탈피 ⇨ 제18대 대통령 인
수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아젠다(Agenda) 선점
- 인수위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추진할 아젠다와 인수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대도강(李代桃僵) 전략으로 소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추진할 아젠다
로 분류

나. 헌법재판관 지명자문위원회 설치

■ 사법부 입장: 적극 추진

■ 주요 내용

-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의 투명화,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시 위원회 자문을 거침

■ 논의 경과

- 학계에서 관련 논의 있었음
- 전해철 의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의견 미회신 상태)
 - 국회, 대법원, 정부에 재판관후보추천위 설치
 - 위원은 법조계 이외 일반인 인사 과반수 이상, 여성 1/3 이상

■ 추진 방안

- 바람직한 위원회 구성안 및 추진 방안 모색
- 법률 개정이 아닌 구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내규와 같이 내규 제정 추진

다.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 임용

■ 사법부 입장: 소극 추진[소극 찬성]

■ 주요 내용

- 내부감찰·감사의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하여 외부인사 임용

■ 논의 경과

- 2010년부터 대검찰청 검찰본부장(홍○○, 이○○), 법무부 검찰관(안○○)을 외부인사로 임용
- 이정현 의원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관련 법률안 발의(제18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분석

- 장점: 엄정한 감찰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 폐쇄적 사법행정 인식 불식에 도움
- 단점: 외부 정보유출 우려, 법원 전체 이익을 고려한 적절한 감사 정보 통제 어려움

■ 추진 방안

- 반대 명분 미약 ⇨ 협상카드로 활용
- 외부인사 임용 시 검찰 또는 감사원 출신을 차관급으로 임용
-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을 지법 부장판사로 하는 등 조직 개편 필요

라. 법관징계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화

■ 사법부 입장: 소극 추진[중립]

■ 주요 내용

- 징계 양정에 관한 온정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외부위원 비율을 높임
 - 현재 3명의 외부위원을 4명 이상으로 늘림(총 위원 7명)

■ 논의 경과 및 분석

- 법관인사제도개선위에서 부정적으로 논의
- 장점: 중립성 강화로 엄정한 징계양정 예상
- 단점: 여론으로 인한 무거운 징계로 법관 신분보장 취지 몰각 우려
- 외국 입법례: 프랑스(외부인사 과반수), 미국(법관으로만 구성)

■ 추진 방안

- 현행 법관 징계양정이 가볍지 않으므로 개정 필요성 적음
- 다만 외부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시 대외적으로 제도개선 효과가 있으므로 불가피할 경우 감찰위원회 설치(공윤위 확대)와 선택적 또는 병행적으로 수용
- 추진시 법관징계법 개정 필요

마. 대법원 감찰위원회 설치

■ 사법부 입장: 소극 추진[수정 찬성(공윤위 확대)]

■ 주요 내용

- 비위 사건 처리의 투명성·중립성 제고를 위해, 대법원 감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감찰사건 심의 후 대법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게 함

■ 기존 제도와 비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 7인 위원(외부위원 6인)으로 구성, 3인으로 소위 구성
 - 주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조치사항 심의하여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 권고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11인 위원(외부위원 7인)으로 구성, 5명 이내 위원으로 소위 구성 가능
 - 재산등록심사, 법관·직원 윤리에 관한 사항 심의,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비위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제시

■ 추진 방안

- 직접적인 반대는 힘들 ⇨ 불가피할 경우 수용
- 다만 대법원 공윤위 권한 확대 방안으로 추진
 - 제도개선 인상은 약하나, 기존 정착된 제도를 활용하고 중요 사건만 처리하는 방식의 제도설계가 용이함

바. 지역별 법관임용자문위원회 신설

■ 사법부 입장: 소극 추진[유보]

■ 주요 내용

-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 제고, 정보 및 의견 수집 통로의 확대 및 제도화를 위해, 법관인사위원회 산하에 고법 또는 지법 권역별로 법관임용자문위원회 설치

■ 구체적 방안

- 위원 구성: 법원장(위원장), 관할 수석부장, 지원장 등 법관, 검사장, 변호사회 회장, 법학교수, 외부인사 등
- 업무: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의뢰받은 자료 수집 및 심의 후 결과 회신

■ 분석

- 장점: 법관임용에 국민 의사 반영으로 투명성·민주성 제고,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및 의견 수집 가능
- 단점: 법관 임용에 대한 외부 영향 강화 및 의원들의 전횡 우려, 주요 정보가 외부에 새나갈 가능성
- 일본: 하급재판소 재판관 지명자문위원회 산하에 지역위원회 설치

■ 추진 방안

- 2013. 1. 법관인사제도개선위에서 논의 예정
-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법관 인사 분권화 방안임
- 다만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 장·단점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 필요

Ⅲ. 전체 아젠다 목록

가. 인사 관련

주제	쪽수	사법부 입장					비고
		적극 추진	소극 추진	중립 /유보	소극 반대	적극 반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각계의 다양한 의견 반영 위해, 비법조인의 비율 높임 ■ 내부위원 수가 유지되고, 대법원장 위촉권이 보장되면 논의 가능
헌법재판관 지명자문위원회 설치	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시 위원회 자문을 거침 ■ 내규 제정을 통해 바람직한 위원회 구성안 및 추진 방안 모색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법조인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 ■ 이미 외부위원이 8명으로 과반수가 넘고 그 구성도 다양화되어 있음
법원행정처 비대화 해소	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권이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현상 해소, 권한 분산 및 축소 방안 ■ 비재판부 근무법관 감소라는 명분에는 반대하지 않음, 다만 현실적으로 사법부 전체의 역량 유지 및 강화 측면에서 검토 필요 ■ 검찰 및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사법행정 담당 법관 축소가 어렵다고 설득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	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대법원장의 인사권 일부를 각급 법원에 위임하는 등 인사권 분산 ■ 법관 인사권 분산이 옳은 방향인지 검토 필요 ■ 다양한 인사 분권화 방안에 대하여 법관인사제도개선위를 포함하여 법원 내부의 의견 수렴 필요

주제	쪽수	사법부 입장					비고
		적극 추진	소극 추진	중립 /유보	소극 반대	적극 반대	
지역별 법관임용자문위원 회 신설	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법관인사위원회 산하에 고법 또는 지법 권역별로 법관임용자문위원회 구성 ■ 향후 법관인사제독개선위에서 논의 예정,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 장·단점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법원행정처 조직의 분리 및 축소	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법원행정처 비대화 해소를 위해 조직의 분리·축소 ■ 신중 검토 필요, 법원 내부의 의견 검토와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 분석
법관임용절차 투명화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전면적인 법조일원화에 따라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된 투명한 임용절차 ■ 명분은 인정, 이미 새로운 법관임용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중 ■ 외부에서 문제 제기 시 새로운 임용방안 홍보
차관급 대우 대상자 감축	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 직급의 축소 ■ 행정부의 일개 청인 검찰과 사법부는 다르고, 국회와 동일한 위상임을 강조 ■ 법조일원화 등으로 판사와 검사는 그 임용절차가 상이함
초임 법관 대우 조정	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다른 공무원과 달리 임용 시부터 3급 대우는 부당 ■ 외국 사례 근거로, 성공적인 법조일원화 및 자질과 품성이 우수한 법관 선발을 위해서는 오히려 처우 개선 필요

나. 감찰 관련

주제	쪽수	사법부 입장					비고
		적극 추진	소극 추진	중립 /유보	소극 반대	적극 반대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 임용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하여 외부인사 임용 ■ 반대 명분 미약, 외부인사 임용 시 변호사 자격자를 차관급으로 임용, 윤감실 조직 개편 필요
법관징계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화	3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법관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높임 ■ 현재 징계양정이 가볍지 않아 필요성은 적으나, 대외적인 개선효과가 있으므로, 불가피할 경우 수용
대법원 감찰위원회 설치	3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대법원 감찰위원회를 신설하여 주요 감찰사건 심의 후 대법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 ■ 직접적인 반대는 힘듦, 불가피할 경우 공윤위 확대 방안으로 수정하여 수용
법관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3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법관에 대한 예방적 감찰활동 강화(수시 및 암행감찰 포함) ■ 예방적 감찰활동과 관련, 법관윤리 교육 및 준수 강조, 법관비리 발생 시 엄정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강조 ■ 암행감찰은 법관 독립 침해 우려가 크므로 수용하기 어려움(내부 사기저하 및 반발 등 부작용)
법관징계의 엄정화	3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법관징계를 엄정히 하여 법관 비위 예방 ■ 2011년 하반기 이후 5건의 법관징계 청구가 있는 등 현재 엄정한 법관징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초를 유지할 것임을 알림

주제	쪽수	사법부 입장					비고
		적극 추진	소극 추진	중립 /유보	소극 반대	적극 반대	
사법감시위원회 설치	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감사기구를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로 구성. 양형위원회와 유사한 형태 ■ 법원행정 조직의 근본적 변경이고, 권한 재배정·관련 조직 재편·법관 비위 사건 종결에 대한 의견제출 권한 부여 등 관련 문제 검토 필요
진정사건심사위원회 설치	4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진정사건심사위를 설치하여 법관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를 담당케 함 ■ 현실적인 이유(대부분 재판 관련 불만임)로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없고, 위원회 신설 시 진정사건 처리에 지나친 비용과 노력 소요
편법적 전관예우 방지 조치	4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공직퇴임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 명의로 사건수임한 후 전화로 법관에게 청탁하는 형태의 편법적 전관예우를 방지 ■ 조치방안 공표 시 오히려 편법적 전관예우를 공론화할 우려, 다만 내부적 실태파악 및 조치방안을 마련해 두고 필요시 적절하게 대응

다. 예산 관련

주제	쪽수	사법부 입장					비고
		적극 추진	소극 추진	중립 /유보	소극 반대	적극 반대	
예산권의 분산	4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법원행정처에서 관장하는 사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권한을 각급 법원에 이양 ■ 예산 편성의 특성상 편성권한 중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임, 결산 감사시 고등법원 단위로 대응을 해야 하므로 업무의 비효율 발생

라. [참고자료 1] 외국 사법행정 현황 검토 (47쪽)

마. [참고자료 2] 외국의 법관 감찰 검토 (80쪽)

[별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중립]

1. 주요 내용 및 제안취지

■ 주요 내용

- 법조인 위주로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비법조인 수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위원 다양화

■ 제안 취지

- 대법관 후보 추천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2. 검토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현황

- 10명으로 구성: 법관 3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아닌 법관),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비변호사 외부위원 3명(여성 1명 이상)

■ 기존 논의경과

- 18대 국회 사개특위
 - 내규에 기하여 설치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의 결과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필수적 자문기관으로 법제화
 - 위원 구성 다양화에 관한 논의는 없었음 → 기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만 추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 의원 등 12인 발의(발의일 2012. 9. 20., 법사위 상정일 2012. 11. 14.)
 - 내용: 위원 9명 → 국회 추천 3명(국회의원 제외), 대법관회의 추천 3명, 비변호사 외부위원 3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되 각 3명 중 1명 이상은 여성

■ 분석

● 장점

- 외부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
-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음

● 단점

- 순수 외부위원보다는 법조인이 대법관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용이
- 대법관 추천이 정치적 고려나 여론의 영향을 받기 쉬움

● 고려 사항

- 비법조인으로 다양화뿐 아니라 여성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
- 내부위원의 수가 유지되고 대법원장의 위원 위촉권이 보장된다면 반드시 현재의 위원 구성을 고집할 필요 없음

■ 법원 입장

● 정책결정 필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
- 이춘석 의원 개정법률안: 신중검토(현행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신중검토 필요) 및 일부 반대(국회 추천권을 인정한다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회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대법관 임명에 관한 견제를 하고 있음에도 중복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 발생 우려) 회신

■ 예상 반응 [◎ 적극 찬성, ○ 찬성, △ 유보적, X 반대]

법원	국민	새누리	민주	법무부
△	○	△	◎	△

3. 결론

■ 최종 입장 [중립]

- 현재의 위원 구성이 최근 법률 개정애 따라 이루어진 것이나, 더 바람직한

위원 구성안이 있다면 논의 가능

- 현재 위원 중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은 법조3역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변경이 사실상 곤란하고,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변경 여지 있음
- 외부위원을 1~3명 증원하고, 외부위원 중 2인 이상을 여성으로 하는 방안도 제시 가능

▣ 추진 전략

- 법률개정사항으로 민주당 측에서 의원입법 추진 예상
- 대법원장의 위원 위촉권이 침해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함을 강조

헌법재판관 지명자문위원회 설치 [추진]

1. 주요 내용 및 제안취지

▣ 주요 내용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시 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함

▣ 제안 취지

-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를 투명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함

2. 검토

▣ 논의경과

- 사개특위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학계 등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음
 - 대법원장이 아무런 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을 선출하거나, 대통령·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에 대하여도 국회 동의를 거치게 하자는 주장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 의원 등 16인 발의(발의일 2012. 11. 26., 법사위 회부일 2012. 11. 27.)
 -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지명·임명할 때에는 국회, 대법원 및 정부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국회·대법원장·대통령이 위촉하되, 법조계 또는 법학계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 과반수 이상, 여성 3분의 1 이상으로 함
 - 재판관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함

▣ 분석

- 장점
 -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 투명화

- 헌법재판관 지명에 있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

● 단점

- 현실적으로 대법관 후보와 헌법재판관 후보의 풀(pool)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

● 고려 사항

- 위원회 명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동일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보다 '헌법재판관지명자문위원회'가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대법원장의 위원 위촉권이 보장되어야 함
- 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하도록 구속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할 소지 있음

■ 법원 입장

● 정책결정 필요

- 전해철 의원 등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아직 미회신

■ 예상 반응 [◎ 적극 찬성, ○ 찬성, △ 유보적, X 반대]

법원	국민	새누리	민주	법무부
○	○	△	◎	△

3. 결론

■ 최종 입장 [적극 추진]

- 도입 필요성에 공감
- 바람직한 위원회 구성안 및 추진 방안 모색 필요

■ 추진 전략

- 법률개정사항은 아님
- 구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내규와 같이 내규를 제정할 것인지,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과 같이 규칙을 제정할 것인지, 규칙 제정과 더불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병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정책결정 필요 → 일응 내규 제정 방안 추진 고려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 [반대]

1. 주요 내용 및 제안취지

■ 주요 내용

- 법조인 위주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 법관인사위원회의 권한 강화 방안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음

■ 제안취지 - 검찰 관련 공약

- 박근혜: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 부여하여 검사장 승진 및 보직인사 심사 등 담당
- 문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개편

2. 검토

■ 현황

- 구성: 법관 3명, 법무부장관 추천 검사 2명(판사 신규임명 심의에만 참여), 대변협회장 추천 변호사 2명,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추천 법학교수 2명, 비변호사 외부위원 2명(여성 1명 이상) 합계 11명
- 권한: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판사의 임명·연임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기존 논의경과

- 18대 국회 사개특위
 - 법원조직법상 자문기관이었던 법관인사위원회를 필수적 심의기관으로 기능·조직 등 법제화
 - 위원 확대 및 구성 다양화: 종전 대법관 3명, 대법관 아닌 법관 3명, 외부위원 3명(법학전문대학원장, 변호사, 교수) 합계 9명에서 위 11명으로 인원 확대 및 다양화
 - 권한은 종전과 동일: 법관의 전보·보직도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법원의 반대로 현실화되지 못함

■ 분석

- 구성의 다양화: 이미 다양화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큼
 - 장점: 사법부 구성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반영

- 단점: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법관 인사에 관한 사항은 법원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외부인사가 다수 포함될 경우 법관의 자질 등을 충분히 심사할 만한 전문성이 없고 그들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재판 우려, 법관 임명·연임에 정치적 고려나 여론의 영향 우려
- 순수 외부위원 확대 주장과 관련해서는, 순수 외부위원보다는 법조인이 법관 적격 여부 등을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있음

● 권한의 강화

- 다수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가 법관의 전보·보직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한다면 법관 인사에 외부 영향력이 행사되는 통로가 될 우려가 있고, 인사비밀 누설로 법관 인사에 관한 신뢰 저하 우려 → 외부위원이 검사, 변호사 등 재판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일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
- 이미 고법부장·고법판사의 보임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음
- 외국에도 법관의 보직·전보인사에 관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는 없음

■ 법원 입장

- 18대 국회 사개특위에서는 법관의 보직·전보에 관한 심의까지 법관인사위원회 권한을 확대하자는 논의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였음

■ 예상 반응 [◎ 적극 찬성, ○ 찬성, △ 유보적, X 반대]

법원	국민	새누리	민주	법무부
×	○	△	○	△

3. 결론

■ 최종 입장 [적극 반대]

- 이미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양화되어 있음 → 위원 중 일부를 외부위원으로 교체하거나 외부위원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법관인사위원회가 이미 주요 보직에 관하여 심의하고 있는 마당에, 법관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법관의 전보·보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심의까지 확대하는 것도 찬성할 수 없음

■ 추진방안

- 앞서 본 분석결과와 같은 논리로 대응

법원행정처 비대화 해소 [반대]

1. 주요 내용 및 제안취지

■ 주요 내용

-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권이 법원행정처에 집중 → 법원행정처의 권한 분산·축소
- 법원행정처 조직이 확대되고 판사들이 주요 보직에 배치됨에 따라 조직 비대화 및 관료화 → 법원행정처 조직 분리·축소 및 사법행정 전담 법관 축소

■ 제안 취지

-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사법관료화 등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2. 검토

■ 논의경과

-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으나 본격적 논의는 없었음
-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쇠신 대상 권력기관(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금감원)에 법원행정처 포함 언급 → 행정처 권한 축소, 일반직 기용 등 주장
- 미사연 검토의견: 사법행정과 정책연구기관의 분리, 외부인사 투입을 통한 사법행정 전담법관 축소, 법원행정처 청사 분리 방안 등이 검토된 바 있음

■ 분석

- 사법행정권한의 분산 [별도 검토]
 - 법관인사권 분산
 - 예산권 분산
- 법원행정처 조직의 분리·축소 [별도 검토]
- 사법행정 전담 법관의 축소
 - 부서별 정책결정권자 및 법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부서에만 판사 보직 유지, 나머지는 법원공무원이나 외부 인사 등 투입 → 공보관, 윤리감사관 등 고려
 -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정책연구교수 등과 같이 사실상 사법행정을 전담하는 법관 중 일부를 법원행정처가 아닌 다른 기관 소속으로 두는 방안

■ 법원 입장

- 종래 비재판부서 근무 법관의 수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명분에 동의하면서도, 현재의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의 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

■ 예상 반응 [◎ 적극 찬성, ○ 찬성, △ 유보적, X 반대]

법원	국민	새누리	민주	법무부
X	△	○	○	△

3. 결론

■ 최종 입장 [소극 반대]

- 비재판부서 근무 법관 감소라는 명분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사법부 전체의 역량 유지 내지 강화라는 측면에서 신중 검토 필요
- 법원행정처 조직이 분리될 경우는 자연적으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이 감소될 것이나,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기보다 법원 내부의 의견 검토 및 정리 필요

■ 추진 전략

-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검찰 및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사법행정 전담 법관의 축소가 어렵다는 논리 전개
 - 법원의 역할 증대로 인한 사법행정 수요 증가, 일선 법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 등의 논거로 비판에 대한 대응 및 설득 시도
 - 법무부·대검찰청 등과 비교한 사법행정 전담 법관의 비율은 상당히 낮음 → 법무부에 검사 87명, 대검찰청에 검사 70명 합계 157명이 행정 업무 담당
 - 우리의 법원행정처와 유사한 일본의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소속 재판관 수는 63명
- 상황에 따라 법원도서관이나 사법연수원의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사실상 사법행정을 전담하는 법관을 법원행정처가 아닌 다른 기관 소속으로 두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 있음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 [유보]

1. 주요 내용 및 제안취지

▣ 주요 내용

-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 일부를 각급 법원에 위임하거나 인사권 행사 시 각급 법원 등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대법원장에 집중된 법관 인사권을 분산

▣ 제안 취지

- 대법원장에 인사권이 집중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독립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나 비판 극복, 법관 및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 각급 법원이나 법관 개개인의 사정을 인사에 충실히 반영

2. 검토

▣ 기존 논의경과

- 사개추위, 국회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음
-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법관 인사권 분권화 방안'에 관하여 논의 중

▣ 제시되고 있는 방안

- 법관 임용 관련
 - 의견 반영 방안: 지역별 법관임용자문위원회 구성 방안 [별도 검토]
 - 권한 위임 방안: 권역별 선발절차 진행 방안
 - 임용절차 일부를 고등법원 책임 하에 시행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
 - 지역법관(전담법관 포함)에 한하여 시행하는 방안, 일반 법조경력자에 한하여 시행하는 방안, 모든 법관에 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장단점: 지역에 맞는 인재 선발 가능하나, 지방권 임용 법관의 자질 하락 등 법관 계층화 우려
- 법관 전보 관련
 - 의견 반영 방안
 - 고등법원 권역 내 전보인사안 제출 방안: 지역법관 등 권역 내 전보인사 대상 법

관에 대한 전보인사안을 대법원에 제출

- 법원 및 지원별 증감인원 조정권 부여 방안: 관할 지방법원장의 법원별 증감의견을 고등법원장이 취합, 객관적 기준에 따라 증원 순위 등 의견을 부기하여 조정의견 제출
- 직무대리 활성화 방안: 단기간 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직무대리가 필요한 경우 고등법원 단위로 적극 활용
- 권한 위임 방안: 2단계 전보인사 방안
 - 고등법원장에게 전보권 일부를 맡겨 전국 단위 전보인사 시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단위로만 전보인사를 시행하고, 고등법원장이 권역 내 전보인사 시행
 - 지법부장 미만 판사들에 대한 전보인사만 위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장단점: 관내 법원의 실정에 맞는 전보인사가 가능하나, 통일적 기준에 따른 전보인사가 곤란하고, 법관 인사가 고등법원장의 주관과 선호도에 따라 좌우되어 관료화 심화 우려

● 고려사항

- 법관 인사권을 분산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인지부터 결정 필요
- 다양한 인사권 분권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 타진 필요

■ 법원 입장

● 정책결정 필요

- 2013. 1. 14. 개최 예정인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계속 논의 예정

■ 예상 반응 [◎ 적극 찬성, ○ 찬성, △ 유보적, X 반대]

법원	국민	새누리	민주	법무부
△	△	△	○	△

3. 결론

■ 최종 입장 [유보]

-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그 후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여 최종 입장 표명함이 바람직
- 제시된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인사 분권화 방안에 관하여 먼저 법원 내부의 의견 검토 및 정리 필요

지역별 법관임용자문위원회 신설 [유보]

1. 주요 내용 및 제안취지

▣ 주요 내용

- 법관 임용시 실시하는 관계 기관장 등에 대한 개별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을 제도화하여, 법관인사위원회 산하에 고법 또는 지법 권역별 법관임용자문위원회 구성

▣ 제안 취지

-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 정보 및 의견 수집 통로 확대 및 제도화

2. 검토

▣ 논의경과

- 국회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음
- 미사연 검토의견: 지역별로 관내 법관 지원자들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관인사위원회 산하 하부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

▣ 구체적 내용

- 구성 권역: 지법 권역별로 구성하는 방안과 고법 권역별로 구성하는 방안
- 위원 구성안: 관할 지역 법원장(위원장), 수석부장, 선임부장(또는 지원장), 검사장(또는 차장검사), 변호사회장, 법학교수 및 비변호사 외부위원 약간명
- 업무
 -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임용신청자 명부 및 관련 자료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회부 → 법관인사위원회는 지역별 법관임용자문위원회에 정보 수집 및 의견회신 요청 → 지역별 위원회는 자료 수집 및 심의 후 결과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송부

▣ 분석

- 장점
 - 법관 임용절차의 투명성 제고: 외부인사를 위원에 포함시켜 국민의 법관 임

용절차 참여 실현, 법관 임용에 국민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사법부 구성의 민주성 고양

-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및 의견 수집: 종래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의 상대방이던 법원장, 검사장, 변호사회장 등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한 자리에서 지원자에 관한 임용 적격 여부를 심의하게 함 → 보다 정확한 의견제시 가능

● 단점

- 법관 임용에 대한 외부 위원들의 전횡 우려
- 법관 지원자 현황 등 주요 정보가 외부로 새나갈 가능성
- 지원자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 법관 지원을 꺼리게 될 우려

● 비교법적 검토

- 일본에는 판사 등으로 임용될 자에 대한 지명의 적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하급재판소 재판관 지명자문위원회가 있고, 효율적인 정보 수집을 위하여 그 산하에 지역위원회 설치 → 외부 정보 수집이 원활하지 않고, 최고재판소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음

■ 법원 입장

● 정책결정 필요

- 2013. 1. 14. 개최 예정인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계속 논의 예정

■ 예상 반응 [◎ 적극 찬성, ○ 찬성, △ 유보적, X 반대]

법원	국민	새누리	민주	법무부
△	○	△	○	△

3. 결론

■ 최종 입장 [유보]

- 법관 인사 분권화와 관련한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그 장단점에 관한 면밀한 분석 후 추진 여부 결정

■ 추진 방안

- 법률개정사항 아님 → 도입시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개정 필요

법원행정처 조직의 분리 및 축소 [중립]

1. 주요 내용 및 제안취지

■ 주요 내용

- 법원행정처 비대화 비판에 대하여 조직의 분리·축소를 통한 비대화 해소 방안 강구

■ 제안 취지

-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법원행정처를 슬림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 검토

■ 구체적 내용

- 사법정책연구기관의 설립
 - 단기 현안 대응과 집행 위주의 행정 분야와 장기 정책연구 분야를 분리하여 후자를 담당할 사법정책연구기관을 별도 설립
 - 추진 방안
 - 대법원 산하 별도 연구기관 창설 방안
 - 사법연수원 기능 확대 개편 방안: 사법연수원을 법관연수기능과 정책연구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법원행정처 연구기능 이관
 - 기대효과 및 문제점
 - 법원행정처의 권한 집중 및 비대화에 대한 비판 극복
 - 정책연구와 집행의 분리로 인한 사법행정의 비효율성, 구분이 모호한 업무들을 획일적으로 구분함으로 인한 업무중복 우려
- 사법등기국을 분리하여 사법등기청 신설
 - 법원 외청으로 사법등기청을 신설하여 사법등기국을 분리하는 방안
 - 지방법원 단위의 하부조직 문제, 청사분리 문제, 관련 예산 등 세부 검토와 정책결정 필요
- 전산정보관리국을 분리하여 통합전산정보센터 신설
 - 분당 전산정보센터를 확대·개편하여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통합전산정보센터를 설치, 법원행정처와 독립한 별도 기구로 운영하는 방안

▣ 법원 입장

- 정책결정 필요

▣ 예상 반응 [◎ 적극 찬성, ○ 찬성, △ 유보적, X 반대]

법원	국민	새누리	민주	법무부
X	△	○	○	△

3. 결론

▣ 최종 입장 [중립]

- 신중 검토 필요
- 현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기보다 법원 내부의 의견 검토와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 분석

▣ 추진 전략

- 법원행정처 조직의 분리는 법률개정사항임 → 면밀 검토 후 불가피한 경우 법률개정 필요

법관임용절차 투명화 [중립]

1. 주요 내용 및 제안취지

■ 주요 내용

-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대에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된 투명한 법관임용절차 실시

■ 제안취지

- 사법연수원 성적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한 즉시임용제도가 폐지되고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실시됨에 따라 법관임용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하여 의혹 제기 및 비판적 논의 가능성

2. 검토

■ 논의경과

- 종래 사법연수원 수료자 및 군법무관에 대하여 사법연수원 성적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법관 임용을 하다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즉시임용제도가 폐지되고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실시됨
-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대의 법관임용절차와 관련하여 외부에서 공식적인 논의나 문제제기는 없음

■ 분석

- 법조경력자 임용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 ⇨ 객관성·공정성 제고
 - 2013년 전면적 법조일원화 실시에 따라 종래 시행하여 오던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용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법조일원화 시대의 원칙적인 임용방식 수립 ⇨ 2012년 하반기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부터 시행
-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품성에 대한 평가절차 강화
 - 종래 연수원성적 중심의 즉시임용절차 탈피 ⇨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품성에 대한 다양한 평가절차 도입
 - 실무능력평가(법률서면 작성 + 실무능력평가 면접) + 인성역량평가(인성역량평가 면접 + 최종 면접)
 - 인성평가 강화 요청에 따라 바람직한 법관상을 설정하고 외부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인성역량평가절차를 충실히 함으로써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

● 폭넓은 의견조회 절차 실시

- 관할 법원장, 변호사회, 소속 기관장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조회를 통하여 법조 경력자에 대한 내·외부 평가자료 수집

● 법관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 11명의 위원 중 8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최종 임용심사 진행
- 2회에 걸친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하여 각종 전형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
 ⇨ 법관인사위원회 심의 이후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심의

■ 법원 입장

-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임용절차를 위해 지속적 검토 및 개선 추진

■ 예상 반응

법원	국민	새누리	민주	법무부
△	○	○	○	△

3. 결론

■ 최종 입장 [소극 찬성]

- 법관 임용절차의 객관화·투명화의 명분을 부인할 이유는 없으나, 법원 역시 그러한 취지로 이미 새로운 법관 임용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중
- 외부에서 문제 제기될 가능성 낮고,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적음

■ 추진 전략

- 외부 문제 제기 시 그러한 취지에 찬동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한편으로 새로운 법관 임용절차에 대하여 홍보 강화
- 향후 법관임용의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법조 경력자를 임용하기 위하여 법관임용절차 개선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실시

차관급 대우 대상자 감축 [반대]

1. 주요 내용

- [박근혜, 문재인 후보 공약사항] : 현재 55명에 이르는 차관급인 검사장급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박근혜), 1/2로 감축(문재인)
 -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 직급의 축소로 논의가 비화될 수 있음

2. 검토

■ 논의 경과

- 2008년 제17대 대통령 인수위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임
 - 정부 슬림화 공약에 따라 검사장급 보직 8자리 감축, 전문검사 양성제도 도입 등 검토 ⇨ 2008. 1. 12. SBS 보도 후 인수위에서 부인
- 2012. 10. 14. 안○○ 새누리당 정치쇄신평위 위원장이 차관급인 검사장급 직급의 감축 주장
 - 경찰은 경찰청장 1명인데, 검찰은 55명인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
 - 언론 및 여론은 대체로 찬성 취지

■ 분석

- 고법 부장판사의 차관급 대우는 ① 전용차량 지원, ② 대외적으로 차관급으로 대우, ③ 사무실이 넓고 카펫이 깔렸다는 것임

■ 법원 입장

- 차관급 대우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용차량 지원임
-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른 전용차량 운용방안과 관련하여 아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고등법원 재판장 또는 16호봉 이상 법관에게 주는 방안, 아예 폐지하는 방안 등 논의

■ (법원 부분) 예상 반응 [◎ 적극 찬성, ○ 찬성, △ 유보적, X 반대]

법원	국민	새누리	민주	법무부
X	○	△	△	X

3. 결론

■ 최종 입장 [소극 반대]

■ 대응논리

- 행정부의 일개 청인 검찰청과 3부 중 하나인 사법부는 상이함
 - 장관급 공직자가 300명 이상인 국회와 동일한 위상인 점 강조
-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재판연구원 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판사와 검사의 임용절차가 달라짐
-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을 추구하는 사법기관의 특성상, 직급이 높을 필요가 있음
- 다만 적극적 반대 시 법원 역시 특권의식에 젖어있다는 비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전용차량에 대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합리적 운영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위와 같은 사유로 소극적으로 반대함이 상당함

초임 법관의 대우 조정 [반대]

1. 주요 내용

- ▣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검사는 임용 시부터 3급(부이사관) 대우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임
 - 동일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초임 법관에 대한 논의로 비화될 가능성 있음

2. 검토

▣ 논의경과

- 박근혜 공약 사항(검사 직급을 법률에 맞게 운영)에는 명확한 언급 없음
- 다만 언론 등에서 검찰을 『특권검찰』로 비난하면서 차관급 검사장 직급이 많다는 점과 더불어 지적하고 있음

▣ 분석

- 법조일원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법관의 보수는 상당히 높음
 - 영국 - 구역법관(7급) 1억 7,800만 원, 런던형사법원 순회법관(5급) 2억 3,900만 원
 - 호주 - 연방간이법원 판사 3억 600만 원, 연방보통법원 판사 3억 9,300만 원
 - 캐나다 - 연방지법 판사 2억 5,300만 원
 - 미국 - 연방법원 판사 1억 8,700만 원

▣ 예상 반응 [◎ 적극 찬성, ○ 찬성, △ 유보적, X 반대]

법원	국민	새누리	민주	법무부
X	△	△	△	X

3. 결론

▣ 최종 입장 [적극 반대, 안전 적합도 낮음]

▣ 대응 논리

-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재판연구원 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판사와 검사의 임용절차가 달라지는 점 강조
- 외국 사례를 근거로, 성공적인 법조일원화 제도 및 평생법관제를 위해서는 품성과 자질이 우수한 법조인 선발 및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오히려 처우 개선 필요성 역설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 임용 [추진]

1.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

■ 주요 내용

-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하여 외부인사를 임용

■ 제안 취지

- 내부감찰·감사의 투명성과 중립성 제고

2. 검토

■ 기존 논의경과

- 2007. 12.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 개방형 직위 임용 도입
 -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내부인사로 임용하다가 2010년부터 외부인사 임용
 - 대검찰청은 2010년 법관 출신인 홍○○ 변호사(16기), 2012년 이○○ 변호사(16기)를 검찰본부장으로 임용(검찰청법 제28조의2)
 - 법무부는 2010년 검찰관으로 안○○ 전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15기)을 임용(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제1항,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 검찰청법 제28조의2)
- 2010. 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
 - 이정현 의원이 2011. 5. 2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법원행정처 등을 포함시킨 개정안 발의(임기만료 폐기) ⇨ 법원행정처는 사법독립 침해 우려 등으로 신중 검토 의견 송부

■ 분석

- 장점: 엄정한 내부감찰·감사 실현, 제 식구 감싸기 비난 해소, 엄정한 감찰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 폐쇄적 사법행정 인상 불식에 도움
- 단점: 외부 정보유출 우려, 법원행정처 내 원활한 의사소통 장애 가능성, 법원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적절한 감사 관련 정보 통제 어려움
- 방안: 외부인사 임용시 검찰 또는 감사원 출신 중 적임자를 차관급으로 임용
 -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하는 등 윤리감사관실 조직 개편 필요
 - 윤리감사관실 권한 확대 검토 및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

■ 법원 입장

- 정책결정 필요

■ 예상 반응 [◎ 적극 찬성, ○ 찬성, △ 유보적, X 반대]

법원	국민	새누리	민주	법무부
X	○	○	○	△

3. 결론

■ 최종 입장 [소극 찬성]

■ 추진 전략

- 이미 법무부 및 검찰에서 실시하고 있어 법원에서만 반대할 명분이 미약 ⇨ 제도 도입 주장시 반대하기보다 협상카드로 활용함이 타당
- 제도 도입시 법관 출신 변호사보다는 검찰 또는 감사원 출신이 적절
- 차관급 인사의 임용이므로 법원조직법에 임용근거를 규정

법관징계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화 [중립]

1.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

■ 주요 내용

-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의 비율을 높임
 - 현행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 ⇨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 제안 취지

- 징계 양정에 관한 온정주의 우려를 불식

2. 검토

■ 논의경과

- 정치권의 현실적 요구는 없으나,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부정적으로 논의

■ 분석

● 장점

- 중립성 강화로 엄정한 징계양정이 예상
- 법관징계위원회의 의견이 법원의 의견이라는 인식을 불식하여 피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음

● 단점

- 여론의 영향을 받아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를 함으로써 법관 신분보장 취지가 몰각될 우려

● 외국의 입법례

- 다수 국가에서 재판에 의한 징계제도를 채택
- 징계위원회를 채택한 나라 중 프랑스가 외부위원이 과반수이고, 미국연방의 경우 법관으로만 구성

■ 법원 입장

- 정책결정 필요

■ 예상 반응 [◎ 적극 찬성, ○ 찬성, △ 유보적, X 반대]

법원	국민	새누리	민주	법무부
×	○	○	○	×

- 현재 감사징계위원회의 구성도 법관징계위원회와 유사

3. 결론

▣ 최종 입장 [중립]

▣ 추진방안

- 법관인사제도개선위에서 최근 부정적 결론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
- 문제 제기시, 우선 현재 법관 징계양정이 가볍지 않으므로 개정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강조
- 다만, 외부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 시 대외적으로 제도개선 효과가 있으므로, 불가피할 경우 검찰위원회 설치(공윤위 확대)와 선택적 또는 병행적으로 수용 가능
-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과반수화를 위해서는 법관징계법 제5조의 개정이 필요

대법원 감찰위원회 설치 [수정 찬성-공윤위 확대]

1.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

■ 주요 내용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와 유사한 대법원 감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감찰사건을 심의 후 대법원장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게 함

■ 제안 취지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의 투명성·중립성 제고

2. 검토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실무

- 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위촉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6명, 위원장은 외부위원), 그중 3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 주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조치사항 등을 심의하여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 ⇨ 종래 모두 수용
 - 주요 감찰사건 : 검사·사무관 이상 검찰공무원의 비위 사건 등
 - 혐의가 인정되는 모든 주요 감찰사건의 조치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비교

- 대법원장이 위촉·임명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7명, 위원장은 외부위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3개 이하 분과위원회 설치 가능
- ① 재산등록심사 등 고유권한 외에, ② 법관·법원공무원 윤리에 관한 사항 심의와 ③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비위 사건에 대한 심의·의견제시 권한이 있음
 - 법관 비위 사건 일부에 대하여 법관윤리위반 여부 및 조치방안 관련 심의에 부의

■ 분석

- 장점: 모든 법관 비위 사건에 대하여 외부위원 과반수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하게 되므로 법관 비위사건 처리가 투명해지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해소될 것임
- 단점: 법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일정 사건 외부 비공개는 불가능하게 됨
- 대법원 감찰위원회 신규 구성 방안 vs.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한 확대 방안

- 대법원 감찰위를 신규 구성할 경우 제도개선 인상은 강하게 줄 수 있고, 대검찰청 감찰위와 유사하게 운영하면 될 것이나, 대법원 공윤위와 같이 제도가 정착되어 권위를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대법원 공윤위 권한의 조정을 검토하여야 함
- 대법원 공윤위의 권한을 확대하는 경우 조기 제도 정착에 유리하고, 대검찰청 감찰 위와는 다른 내용의 제도설계가 가능하나, 지나친 권한 확대로 정당성 시비가 일 수 있고, 예기하지 못한 과도한 업무 부하가 될 수 있음

■ **법원 입장**

- 감사기구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예상 반응 [◎ 적극 찬성, ○ 찬성, △ 유보적, X 반대]**

법원	국민	새누리	민주	법무부
X	○	○	○	△

3. 결론

■ **최종 입장 [소극 찬성]**

■ **추진 전략 : 대안으로 대법원 공윤위 권한 확대**

- 이미 법무부 및 검찰에서 실시하고 있어 법원에서만 반대할 명분이 미약 ⇨ 제도도 입 주장시 반대하기보다 협상카드로 활용함이 타당
- 다만, 대검찰청 감찰위와 달리 주요 감찰사건 중 중요사건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실현에 유리한 대법원 공윤위 권한 확대 방안이 타당함
- 대법원 공윤위 권한을 확대하는 경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 되고, 신규로 대법원 감찰위를 설치하는 경우 대검찰청의 경우와 같이 대법원 예규로도 가능하나 기관의 위상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규정함이 타당

법관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반대]

1.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

■ 주요 내용

- 법관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관에 대한 예방적 감찰활동(암행감찰 포함)을 강화

■ 제안 취지

- 검찰의 비리사건을 근거로 법원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요구가 예상

2. 검토

■ 현황

- 신빙성 있는 진정 등 구체적 단서에 따라 사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하는 외에, 비위 발생 가능성에 근거하여 불특정 다수 법관을 상대로 비위 적발을 위한 조사는 하지 않고 있음
- 법관윤리를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한 제재를 가하는 간접적 방법으로 법관 비위를 억제

■ 외국 사례

- 영미법계 국가는 국민이 법관 상대 진정 제기가 가능하여 사전에 직무감찰은 하지 않고, 독일은 법원행정 담당자가 법관 독립 불침해 범위 내에서 직무감독
- 프랑스는 법무부장관 직속 사법감찰관이 사법관의 법적 의무 준수 여부에 관하여 행정감찰을 하므로 비위 적발을 위한 감찰활동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 검찰의 감찰실무

- 일선 감찰담당자의 월 1회 이상 감찰보고. 사무감사 당시 검사·총무계장 등 면담으로 문제 검사·직원에 관한 첩보 입수
- 진정·자체 비리 첩보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의 6개 암행감찰팀이 통비법위반 수단을 배제한 범위에서 미행을 실시하되, 적발할 때까지 계속하고 기타 증거 수집·조사

■ 법관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방안

- 법관 비위 단서 수집을 위한 통로 확대
 - 소속 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 등이 월 1회 이상 감찰정보를 보고하게 하고, 기획감

사·수시감사시 법관 등을 면담하거나, 감사담당자를 격려하면서 단서 수집

● **암행감찰 팀 구성 및 감찰 실시**

- 특정 변호사와의 잦은 회식, 명절·경조사·전출시 금품 수수, 골프회동 등 적발
- 비위적발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그 경고효과는 상당할 것임

● 다만, 법원 내부에 의한 사법독립 침해라는 지적이 있고,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을 통제하고 있다는 비난이 예상되며, 법관을 잠재적 비위자로 보는 것이어서 자존감 손상과 사기 저하 및 집단적 반발 우려

■ **법원 입장**

- 법관의 독립에 대한 침해 우려가 크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예상 반응 [◎ 적극 찬성, ○ 찬성, △ 유보적, X 반대]**

법원	국민	새누리	민주	법무부
X	○	○	○	△

3. 결론

■ **최종 입장 [적극 반대]**

■ **추진 전략**

- 예방적 감찰활동 강화 요구에 대하여는 일응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를 위해 법관윤리 교육 및 준수 강조 등을 하고 있고 향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법관비리 발생 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리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고 대응
- 다만, 암행감찰은 외국 사례를 예로 들면서 헌법적 가치인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 표명
 - 법원 내부 구성원의 사기저하 및 반발 우려 등 부작용 강조
- 불가피하여 위 검토방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관 비위 단서 수집을 위해서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을 『감사업무 관련사항 보고지침』으로 확장하여 정기 감찰정보 보고를 규정
- 암행감찰 팀 구성 및 감찰 실시를 위하여 직원 보충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의 윤리감사제1심의관 분장사무로 감찰사무를 추가

법관징계의 엄정화 [중립]

1.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

■ 주요 내용

- 법관징계를 엄정하게 함으로써 법관 비위를 예방

■ 제안 취지

- 법관 비위 관련 징계청구가 소극적이었고, 징계처분도 관대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법관징계의 엄정화 요구가 예상됨

2. 검토

■ 기존 논의경과

- 국회 및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

■ 분석

- 적극적 징계청구 및 엄정한 징계양정은 제도 내용 문제가 아니라 제도 운영 문제
- 최근 징계청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1995년 ~ 2011년 상반기 15년 동안 9건(연 0.6건)의 징계청구가 있었으나, 2011년 하반기 ~ 2012년 하반기 1년 여 동안 5건의 징계청구가 있었음
-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도 강화되는 추세임
 - 2003년 제주 골프 사건 → 불문 / 2004년 공무집행방해 → 견책 / 2005년 음주운전 → 견책 / 2006년 무단결근 → 견책 / 2007년 당사자와 부적절 만남 → 정직 10월 / 2007년 명예훼손 및 부적절 글 지속 게시 → 정직 2월 / 2011년 선 부장 사건 → 정직 5월
 - 2012년 음주운전 → 감봉 2월 / 2012년 선물 및 향응 수수 → 정직 2월 / 2012년 합의누설 → 정직 6월 / 2012년 주취 폭행 → 감봉 6월

■ 법원 입장

- 법관징계의 엄정화라는 명분에 찬성하지만, 그 구체적 방안 마련에는 신중해야 함

■ 예상 반응 [◎ 적극 찬성, ○ 찬성, △ 유보적, X 반대]

법원	국민	새누리	민주	법무부
×	○	○	○	△

3. 결론

■ 최종 입장 [중립]

■ 추진 전략

- 엄정한 징계라는 명분에는 찬성
- 다만, 위와 같은 운영 기조는 유지될 것이므로, 문제 제기시 앞으로도 엄정한 법관징계가 이루어질 것임을 설득함과 아울러 앞서 본 것과 같은 법관 징계 엄정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임을 알림

사법감시위원회 설치 [반대]

1.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

■ 주요 내용

- 감사기구를 법원행정처에서 독립한 대법원 산하 독립 위원회로 구성

■ 제안 취지

- 내부감찰·감사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감사기구 설치 요청 가능성

2. 검토

■ 실현방안

- 양형위원회를 벤치마킹 : ① 위원 구성 다양화, 외부 인사 과반수, ②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상임위원이 실질적 감사책임자 역할, ③ 사무기구는 기존 윤리감사관실 조직 활용

■ 분석

- 감사기구 위상 제고로 감사기능 강화, 가장 강도 높은 내부감사 투명성·중립성 제고 방안 등 장점이 있으나, 법원행정 조직의 근본적 변경으로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
- 제도 도입시 예산 감사권 등 권한 재배정, 관련 조직 재편, 법관 비위 사건 종결에 대한 의견제출 권한 부여 등 관련문제 검토가 필요

■ 법원 입장

- 정책결정 필요

■ 예상 반응 [◎ 적극 찬성, ○ 찬성, △ 유보적, X 반대]

법원	국민	새누리	민주	법무부
X	△	△	△	X

3. 결론

■ 최종 입장 [소극 반대 - 안건 적합도 낮음]

■ 대응 논리

- 검찰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현실적으로 도입주장을 할 가능성은 낮음
- 도입 주장이 있을 경우, 근본적 변화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설득하여 검토 및 대응 시간을 확보

진정사건심사위원회 설치 [반대]

1.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

■ 주요 내용

- 진정사건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법관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를 담당하게 함

■ 제안 취지

- 법관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업무의 투명화를 위해 주장 가능성

2. 검토

■ 실현방안

- 법원행정처장이 임명·위촉한 적정 인원의 내부·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진정사건심사위원회를 법원행정처에 설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
- 위원회·소위원회가 법관에 대한 진정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국처리

■ 진정사건 현황

- ① 인터넷 진정은 현재 진행 사건 관련 제기, 7일 이내에 처리, ② 우편 진정은 대부분 과거 종결 사건 관련 제기, 반복 진정이 다수이며, 90일 이내에 처리
- 2011. 10. ~ 2012. 9. 우편 진정 416건(결과불만 271, 진행불만 49, 기타 96), 인터넷 진정 479건(결과불만 259, 진행불만 65, 기타 155) 접수

■ 분석

- 법관 진정사건 처리를 투명화·공정화하여 신뢰제고 장점
- 개인 비위 진정은 거의 없고 대부분 재판 관련 불만으로서 진정인을 만족시킬 여지가 거의 없으며, 진정사건 처리에 지나친 비용과 노력이 소요

■ 법원 입장

- 정책결정 필요

■ 예상 반응 [◎ 적극 찬성, ○ 찬성, △ 유보적, X 반대]

법원	국민	새누리	민주	법무부
X	○	○	○	△

3. 결론

■ 최종 입장 [소극 반대 - 안건 적합도 낮음]

■ 추진 전략

- 진정에 대한 투명한 처리라는 명분에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진정에 의해 비위가 드러나거나 재판 관련 불만을 제기하는 진정인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 반면, 근거 없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없음을 설득하여 반대함이 상당
- 진정사건심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인터넷 진정에 대한 처리기간을 우편 청원과 동일하게 되도록 예규 개정 필요

편법적 전관예우 방지 조치 [중립]

1.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

■ 주요 내용

- 수임제한 제도 시행 이후 공직퇴임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 명의로 사건수임을 한 후 전화로 법관에게 청탁을 하는 형태의 편법적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조치

■ 제안 취지

- 법원 차원에서 편법적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필요 검토

2. 검토

■ 논의경과

- 2012. 7. 동아일보에서 편법적 전관예우를 보도하면서 '현직 법관부터 청탁을 못 받게 윤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
- 2012년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 등의 관련 질의가 있었음

■ 시행 조치

- 동아일보 보도 직후 법원행정처에서는 각급 법원장에게 당부 서신을 발송
 - 편법적 전관예우 존재 ⇨ 이러한 전화를 묵인함은 법관윤리 문제 ⇨ 법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소속 법관들에게 주의 환기 부탁

■ 실현방안

- 공직퇴임 변호사의 전화를 막을 직접적 방법은 없으므로, 미리 약속되지 않은 전화를 아예 받지 않거나, 청탁을 받으면 이를 거절하고 재발방지 요구 또는 청탁사실 신고하는 방안이 있음
- ①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방안을 수시로 당부하면서 그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하거나, ②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으로 공표함으로써 법원의 노력을 외부에 알릴 수 있을 것임

■ 법원 입장

- 정책결정이 필요

■ 예상 반응 [◎ 적극 찬성, ○ 찬성, △ 유보적, X 반대]

법원	국민	새누리	민주	법무부
×	△	○	○	△

3. 결론

■ 최종 입장 [중립]

■ 추진 전략

- 별 여론이 없는 상황에서 편법적 전관예우 방지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편법적 전관예우가 법원에 일반화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문제가 제기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실태파악과 조치방안을 마련해 두고, 필요한 경우 위 조치방안을 시행할 예정임을 공표함
 - 내부적 당부 및 언론 공표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고, 권고의견은 2013년 상반기에 추진 가능

예산권의 분산 [반대]

1. 주요 내용 및 제안취지

■ 주요 내용

- 법원행정처에서 관장하는 사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권한을 각급 법원에 이양

■ 제안취지

-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 분산의 일 방편으로 예산권의 분산 검토

2. 검토

■ 논의경과

- 종래 예산 배정에 관하여 각급 법원의 자율권을 부여해달라는 내부 요청이 있었을 뿐, 외부에서 예산권을 각급 법원 등에 이양하라는 문제제기는 없었음

■ 현황

● 예산의 편성

- 행정처 각 실·국에서 정책목표, 전국 법원 집행실적 및 각종 사건 관련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예산안 초안을 만든 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하에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다음 연도 재정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한 각 기관별 예산의 실링(ceiling)의 범위 내에서 대법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협의과정을 통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정함

● 예산의 집행

- 대법원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확정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재배정기준안을 작성하여 대법관회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배정
- 예산재배정기준안은 전년도 각급 법원의 집행실적(청사규모, 현원)이나 기과약된 특이소요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정기 배정과 수시 배정으로 나누어 집행

■ 타 기관의 경우

-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대법원과 같이 중앙집권적 예산 편성 및 집행 체제를 취하고 있음
- 검찰의 경우에도 대검찰청 사무국에서 예산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방안

● 고등법원 단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각급 법원에서 예산 편성이 가능한 사업의 선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각급 법원에 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정책 추진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행정처 주관 부서와의 협의시스템 구축 필요
- 예산 집행은 전액을 고등법원에 정기배정하고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에 정기배정 또는 수시배정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음

■ 법원 입장

- 정책결정이 필요하나, 가능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

■ 예상 반응

법원	국민	새누리	민주	법무부
×	△	○	○	△

3. 결론

■ 최종 입장 [반대 - 안건 적합도 낮음]

- 예산 편성의 특성상 편성 권한 중 이양할 수 있는 분야는 일부 제한된 사업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사법행정권 분산에 대한 기여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오히려 고등법원의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집행이 지체될 우려
- 결산 감사 시 각급 고등법원 단위로 대응을 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의 비효율 발생
- 결국 행정처 집중의 문제를 고등법원 집중의 방식으로 전환시킨다는 집행방식 변경 이외에 뚜렷한 개선효과를 찾기 어려움

■ 추진 전략

- 예산 분권화는 여러 모로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사법부의 이익에 반하므로 선제적으로 내세울 이슈는 아님
- 외부 문제 제기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불가피할 경우 고등법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하는 방식을 추진
-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각급 법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내부 불만이 없도록 할 필요

외국 사법행정 현황 검토

1. 검토 배경

▣ 행정처가 비대하다는 문제 제기

- 행정처에 판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일반직을 과감히 기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 법원행정처를 법원 내 정보·인사권을 독점한 신권력기구로 표현

▣ 검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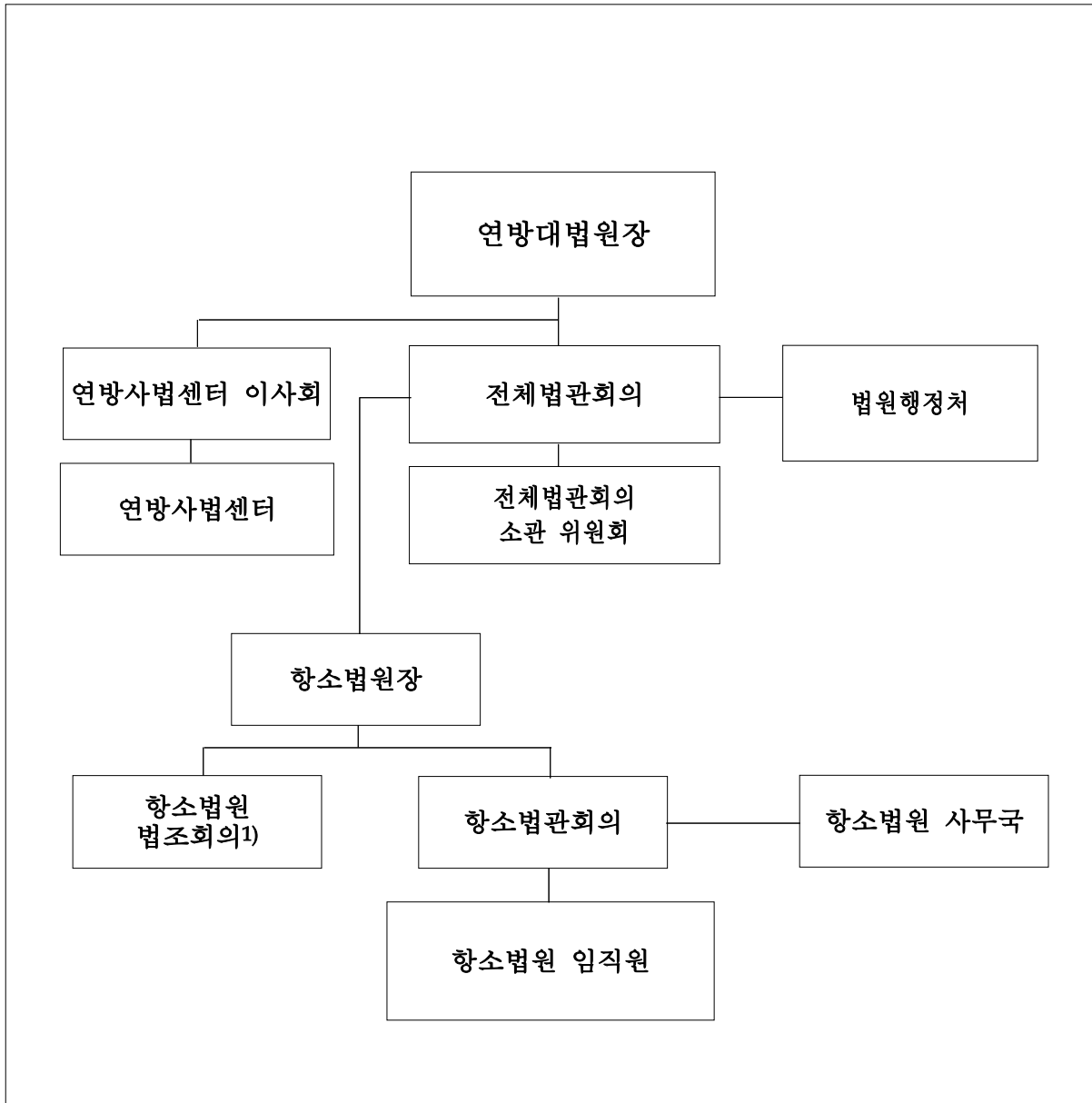
- 외국의 사법행정 현황 검토
 - 사법행정 중 특히 인사, 예산, 정책 등 우리의 법원행정처에 해당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검토
 - 각급 법원 단위의 사법행정은 검토에서 제외(예컨대 각 지방법원장의 소속 법관 및 직원에 대한 감독 등)
- 외국 사법행정 담당 기관의 구성원(법관, 일반직 또는 외부인 등) 및 그 규모

2. 미국

1) 개요

- 미국의 사법행정 담당기관으로는 사법정책 의결기관인 ‘전체법관회의’와 그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연방법원행정처’가 있고, 별도로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와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연방사법센터’가 있으며, 항소법원 단위 사법행정 기관으로 ‘항소법원법관회의’가 있음
- 연방사법센터의 기능과 업무는 일부 연방법원행정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미국 사법행정 개요>



2) 전체법관회의(Judicial Conference of the U.S.)

■ 설립배경

- 20세기 산업화·사회화로 사건의 적체 및 심리의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개혁운동이 진행되어 연방 사법행정의 효율화, 조정 등의 요구가 생김
- 항소법원장회의 → 전체법관회의
 - 당시 사법개혁 논의는 '사법부 내 보조기관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1922년 전국 항소법원장들이 참가하는 '항소법원장회의(The Conference of Senior Circuit Judges)'를 창설함

1) 항소법원 단위로 설치되어 항소법관, 변호사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법관회의와 성질이 다름

- 1948년 명칭을 ‘전체법관회의(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로 바꾸었고, 1957년부터 지방법원 판사도 회의에 참여하게 됨

■ 역할²⁾

- 전체법관회의는 법관 윤리에서부터 전산정보 기술에 이르기까지 연방법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광범위한 감독, 연구 및 정책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법원장은 매년 전체법관회의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입법을 요청함

■ 임무

- 연방법원 업무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연구
 - 각급 법원의 업무현황, 예산, 업무량 등
- 연방법원의 사법행정에 대한 정책 결정
- 각급 법원 재판절차의 통일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한 권고
- 의회에 제안할 법관 증원 등 사법행정에 관한 입법 사항 마련
- 연방소송규칙 또는 실무의 효과에 대한 연구 및 제·개정 권고안 마련
- 법관들의 항소법원 또는 지방법원 사이의 전보 계획 마련
- 각급 법원의 기타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지휘 및 감독

■ 구성

- 연방대법원장은 전체법관회의의 의장이 됨
- 연방항소법원(Circuit Court) 12개 지부의 항소법원장 및 항소법원 관내의 지방법원 판사 1인 등 각 지부에서 2명씩 참가하고, 연방항소법원 연방지부(Federal Circuit Court)³⁾ 및 연방국제통상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의 법원장도 구성원임
 - 이에 따라 2012. 10. 현재 전체법관회의를 구성하는 연방법관은 26명이고(연방대법원장 제외), 파산법관, 부판사 등은 참관인(observer)으로 참여함
- 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되는 항소법원 관내의 지방법원 판사는 관내의 모든 지방법원 및 항소법원 판사의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3년 이상 5년 이하임

2) 미국연방법원조직법 331조(28 USC §331) 참조

3)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은 1~11 지부와 D.C지부 및 연방지부(Federal Circuit) 등 총 13개로 이루어져 있음

- 법원행정처장은 전체법관회의의 사무총장이 되며, 전체법관회의의 감독하에 전체법관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함

■ 회의 개최

- 법령상 전체법관회의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매년 소집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매년 3월 및 9월 2회에 걸쳐서 개최됨

■ 위원회

- 전체법관회의 산하에는 사법행정의 분야별로 20개에 달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법원장은 위원회 구성에 전적인 권한을 행사함
- 위원회의 업무
 - 각 소관 위원회는 대법원장, 집행위원회, 법원행정처장, 의회 및 다른 위원회 등이 요청하는 사항을 연구·검토하여 주요한 사항을 전체법관회의에 상정하고, 전체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법원행정처에서 집행함
 - 위원회 위원은 예산에 관하여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등 의회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직접 의회와 접촉하며, 법원행정처장이나 간부진(staff)이 함께 의회에 동행하여 위원을 보좌함
- 위원회 구성은 매년 10월 법관들의 희망 또는 다른 법관들의 천거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며, 보통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함
 - 법관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고 함
- 각 위원회를 총괄하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가 전체 위원회 활동을 조율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집행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전체법관회의 및 집행위원회의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위원회 현황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 법관회의 준비, 각 위원회의 업무 조율
- 법원행정처위원회(Committee on the Administrative Office)
 - 법원행정처와의 업무 조율 및 집행 감독
- 파산제도위원회(Committee on the Administration of the Bankruptcy System)

- 파산법원 및 파산 관련 사법행정
- 예산위원회(Committee on the Budget)
 - 사법부의 예산 편성
- 윤리위원회(Committee on Codes of Conduct)
 - 법관윤리강령의 준수
- 재판운영 및 사건관리위원회(Committee on Court Administration and Case Management)
 - 효율적인 사건 관리, 각급 법원의 재판 운영 및 배심원 운영
- 형사법위원회(Committee on Criminal Law)
 - 형사재판 및 형사법 관계 사법행정
- 국선변호위원회(Committee on Defender Service)
 - 국선변호제도 개선
- 연방-주 관할위원회(Committee on Federal-State Jurisdiction)
 - 연방 관할 사건의 범위 및 주 법원 관할 사건과의 관계
- 재산공개위원회(Committee on Financial Disclosure)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재산 공개
- 정보기술위원회(Committee on Information Technology)
 - 사법정보화
- 항소법원 간 인사위원회(Committee on Intercircuit Assignments)
 - 법관의 타 지역 항소법원 전보
- 국제사법교류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Judicial Relations)
 - 사법부의 국제 교류
- 사법부위원회(Committee on Judicial Branch)
 - 의회·행정부와의 관계, 법관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
- 사법자원위원회(Committee on Judicial Resource)

- 법관의 증원 등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 부판사제도위원회(Committee on the Administration of the Magistrate Judges System)
 - 연방 부판사 제도의 운영
- 법관징계위원회(Committee to Review Circuit Council Conduct and Disability Orders)
 - 법관 징계 및 법관의 업무 수행 불가에 대한 판단 등
- 소송규칙위원회(Committee on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 소송규칙 등의 개정 등
 - 분야별로 5개의 전문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 보안 및 시설 위원회(Committee on Security and Facilities)
 - 청사 보안 및 청사 시설 확보

3) 연방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 설립 배경

-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법행정의 비효율성을 공격하면서 1939년 창설함
- 종래 미국의 연방 사법행정은 법무부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이를 사법부로 이관하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사법행정 관료들 둌
 - 당시 법무장관 Homer Cummings는 법원행정처를 창설하는 법안을 국회에 보내면서 “법원조직은 스스로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행정기구를 갖지 않고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작동할 수 없으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행정이 행정부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발적으로 권한을 이전했다고 함⁴⁾

▣ 기능 및 역할

- 회계, 관리, 각종 프로그램, 정보화 등 일반적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함
- 연방 사법행정의 정책결정 기능은 전체법관회의에 부여되어 있고, 법원행정처는 대

4) James Duke Cameron, The Chief Justice and the Court Administrator; The Evolving Relationship, Federal Rules Decisions 1987 p445(113 FRD 439)

법원 또는 전체법관회의에서 부여한 임무를 수행함⁵⁾

- 전체법관회의 및 위원회가 정책 연구·결정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및 물자를 지원함
 - 회의 기획, 일정 관리, 보고서 작성 및 건의사항 개발 등
- 구체적인 수행 업무
 - 전체법관회의 결의 사항의 집행
 - 전체법관회의 및 위원회에 인력 제공
 - 전국 법관 및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원
 - 각급 법원의 행정 담당 직원들에 대한 조언
 - 법원 직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직원들의 인사, 경리, 봉급 등에 관한 중앙 관리
 - 지역 예산 운영에 관련된 예산지침의 마련 및 시행
 - 출판물의 발행
 - 입법부, 행정부 및 대국민과의 관계 조율
 - 재판통계의 수집 및 분석
 - 홍보업무
 - 전산시스템 개발과 관리
 - 청사보안 및 시설 관리·유지 등

■ 구성

- 법원행정처의 모든 권한과 의무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처장이 그 권한의 일부를 차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음
 - 처장은 대법원장이 전체법관회의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음
 - 현 법원행정처장은 Thomas F. Hogan으로서 2011. 10. 제8대 처장으로 취임하였음. 그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사람 중 최초의 현직 법관으로서, 1982년 연방지방법원 D.C 지부 법관으로 임명되어, 해당 법원장 및 전체법관회의 집행위원회

5) 28 USC §604(a)(24)

(Executive Committee) 의장을 역임했음

- 처장 산하에 처장을 보좌하는 운영담당 차장과 법무담당 차장이 있음
- 법무, 공보, 법원행정, 국선변호, 시설보안, 예산, 인사, 사법정보화, 총무, 법관프로그램, 보호관찰 등의 산하 부서로 구성됨
- 차장과 부서장 등 모든 직원은 법관이 아닌 사법행정 관료임
 -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 프로그래머, 분석가, 통계학자 등 다수의 전문 직업인이 근무하고 있음

4) 연방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

▣ 기능 및 역할

- 1967년 사법행정의 개선을 목적으로 법원행정처와 독립된 기구로 창설됨
- 연방 사법행정에 대한 연구와 법관 등에 대한 연수를 주로 담당함
 - 2011년에 신규 임명 연방법관 연수 등 법관 프로그램 61회, 국선변호인 및 로클럭 교육 7회 등 각종 연수,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함
- 기능이 법원행정처와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어, 두 기관은 협의를 거쳐 담당 업무를 조정함

▣ 구성

- 연방사법센터의 전반적인 활동을 관장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이사회(Board)가 설치되어 있음
 - 이사회는 연방대법원장, 2명의 항소법원 판사, 3명의 지방법원 판사, 1명의 파산법원 판사, 1명의 부판사 및 법원행정처장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연방대법원장임
 -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판사는 전체법관회의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4년임
- 이사회에서는 연방사법센터의 업무 집행을 위하여 소장(Director)과 1명의 부소장(Deputy Director)을 임명하고, 기관 산하 부서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있음
- 소장은 법관이 임명되고, 소장 이외의 간부진은 모두 사법행정 관료로서 주로 로스쿨 출신 인사들임

▣ 주요 기구

- 소장실 (The Director's Office)
 - 연방 사법센터의 전체적인 운용 및 외부 기관과의 관계를 담당
- 교육국 (Education Division)
 - 법관 및 법원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과 교재 발간
- 연구국 (Research Division)
 - 연방 사법절차와 법원 운영, 양형과 그에 대한 영향에 대한 실험과 연구 수행
 - 법관회의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연구 수행
- 연방사법역사실(Federal Judicial History Office)
 - 사법부의 역사와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 및 각급 법원의 사법 역사 프로그램의 지원
- 국제사법실(Interjudicial Affairs Office)
 - 외국 사법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연방 법원의 정보 제공

5) 항소법관회의(Judicial Council of the Circuit)

- 1938년 법원행정처를 설립하면서, 사법행정의 권한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법원행정처 설립과 함께 창설됨
- 항소법관회의는 당해 항소법원의 최고 사법행정 기관이며, 전체법관회의와 지방법원 사이에서 중간적 관리 기능을 함
- 관내 지방법원 판사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전체법관회의에 보고책임을 지며, 법관회의 및 법원행정처의 권고나 지시를 항소법원의 사법행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함
- 항소법관회의는 항소법원장, 동수의 항소법원 법관 및 관내 지방법원 법관들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관내 법관들에 의하여 선출됨
- 구체적인 권한으로는, 항소법원 관내에서 효과적이고 신속한 재판 실행을 위한 명령·규칙제정권, 관내 법원이 제정한 규칙에 대한 심사권 등을 가짐
- 항소법원 사무국(Circuit Executive)
 - 항소법원의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항소법관회의가 위임한 사무를 수행함

- 구체적인 업무로는 관내 법원의 비재판 활동에 대한 행정적인 통제, 인사, 예산, 회계, 시설 유지, 통계 수집 등이 있음

6) 소결론

- 미국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한 사항은 전체법관회의 및 그 위원회에서 연구·검토를 거쳐 결정되며, 2012. 10. 현재 전체법관회의의 구성 법관은 26명임
- 법원행정처는 순수 사법행정을 수행하는 외에 전체법관회의 및 위원회에 대한 업무 지원, 정책결정사항의 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 전문성 있는 업무를 수행함
- 실제로는 정책입안이나 연구 및 보고서의 작성, 대국회 업무 등 사법행정의 주요한 사항에 있어서 전체법관회의의 구성 법관들과 법원행정처의 소관부서가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임
- 법원행정처 구성원은 처장을 제외하고는 법관이 아니며,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직업인이 다수 있음

3. 일본

1) 개요

▣ 일본 사법제도의 연혁

- 1889년 공포된 명치헌법은 대륙법계 사법제도를 받아들였는데, 당시 사법행정권은 내각의 일원인 사법대신이 장악하고 재판소에 관한 규정과 훈령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음
- 1946년 공포된 현행 헌법은 연합군 사령부의 영향으로 영미법계 제도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혼재된 형태의 사법제도로 바뀌게 되었음

▣ 일본의 사법행정기관

-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 일본의 사법행정권은 최고재판소의 재판관회의에 속하고, 최고재판소 장관이 통할함(재판소법 제12조)
 - 최고재판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최고재판소에 사무총국을 둠(재판소법 제13조)

- ☞ 최고재판소의 사법행정업무는 재판관회의가 담당하고, 재판관회의의 행정사무를 보좌하기 위해 사무총국을 두고 있는 형태임

● 출향제도

- 판사가 일시적으로 퇴직하여 법무성에는 검사 신분으로, 외무성이나 국회에서는 일반 직원 신분으로 근무한 후 다시 내각에 의해 판사로 임명되어 복귀하는 제도임
- 1970년대 최고재판소와 법무성의 비공식합의에 의해 시행되었음
- 매년 25명 정도 선발되어 주로 법무성의 민사국, 송무국 등에서 근무하고 있음
- ☞ 출향제도는 판사의 신분을 떠나 검사로 임관하여 법무부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독일 등 다른 대륙법계 국가에서 법관이 법무부에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다름

2) 사무총국의 연혁

■ 사무국 → 사무총국

- 1947. 8. 최고재판소 발족 시 사무국으로 출범. 당시 7개의 과를 둔 소규모 조직이었음
- 1948. 12. 기구개혁을 단행하여 사무국을 폐지하고 현재의 사무총국을 설치함

■ 배경

- 사법부와 내각, 국회와의 긴장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
 - 1948. 1. 내각 농림상이었던 平野力三이 사회당 내 대립으로 파면되자 수상을 상대로 신분유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동경지방법재판소가 인용
 - 1948. 5. 참의원 사법위원회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5개의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를 개시하고 최고재판소가 사법권 침해라고 반발
- 사법권 독립과 관련된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고 입법부나 행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독자적인 사법행정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구개혁을 단행

3) 사무총국의 기능

■ 규칙.規程의 제정 업무

- 최고재판소의 규칙·규정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사항임

- 사무총국에서 필요한 조사·검토를 한 후 초안을 작성하여 재판관회의에 제공하고, 성립된 규칙의 공시 등의 절차를 행함
- 매년 제정된 규칙의 수는 10건 미만임

■ 법률의 제정, 개정 업무

- 최고재판소는 독자적인 법안제출권이 없음
- 재판소의 조직·제도·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무성이 閣議에 제출하는데, 사무총국의 소관국이 법무성과 연락하여 법안내용을 조절하는 등 법개정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
- 다른 省廳이 입안하는 법률의 제·개정 중 재판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 및 법안 내용을 조절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 인사에 관한 사항

- 일본의 재판관 임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최고재판소 장관 : 내각의 지명으로 천황이 임명함
 - 최고재판소 재판관, 고등재판소 장관 :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함
 - 하급재판소 재판관 : 최고재판소가 지명하고 내각이 임명함
- 사무총국은 하급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재판관의 보직을 비롯한 보수, 급여, 복무, 연수 등 인사에 관한 광범한 사무를 담당함

■ 예산에 관한 사항

- 전국 재판소 예산의 편성, 요구, 재정 당국과 절충 및 성립된 예산의 집행 등 사무를 담당함

■ 재판소의 자료 정비

- 최고재판소판례집을 비롯한 각종 재판례집, 재판관 및 서기관의 직무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각 재판소 등에 배부하며, 公刊되어 있는 법률 도서나 자료를 선정하여 배포함

■ 합동·협의회 개최

- 사무총국은 상황에 따라 고등재판소 장관, 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 소장을 소집하거나 이와 별도로 민사·형사·행정소송 등에 관계되는 재판관을 소집하여 제도운영

이나 법령해석에 관한 협의를 하는데, 이를 재판관합동·협의회라고 함

- 재판관합동·협의회는 최고재판소가 주재하는 것과 고등재판소가 주재하는 것이 있음

- 최고재판소 주재 재판관합동·협의회에는 재판원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 재판관 인사평가방법 등과 같이 사법행정 전체에 관계되는 것이 있고, 형사·민사·행정·가정국이 관장하는 사항에 관한 법해석이나 소송지휘에 관한 것을 담당하는 회의도 있음

▣ 기타 재판제도, 재판운영 등에 관한 연구.조사

- 그 밖에 직·간접으로 재판제도, 재판운영 등에 관해 문제점을 정리하고 외국의 사례를 수집·검토하는 업무를 사무총국의 각 소관국이 담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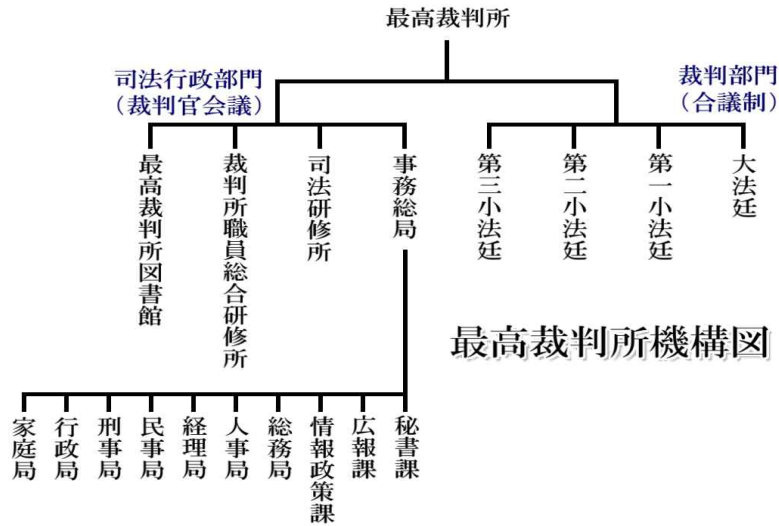
4) 사무총국의 조직

▣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규칙」

- 제1조 (직원)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최고재판소가 정한 직원을 둔다.
- 제2조 (내부조직) ①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그 사무를 분장시키기 위해 국과 과를 둔다.
② 국에 그 사무를 분장시키기 위해 과(이하에서는 ‘국의 과’ 라고 한다) 및 실을 둘 수 있다.
- 제3조 (사무차장) ①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사무차장 1인을 두고 재판소 사무관으로 충원한다.
②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도와 사무총국의 사무를 정리하고 각 실국의 사무를 감독한다.
- 제3조의2 (심의관) ①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심의관을 두고 재판소 사무관으로 충원한다.
② 심의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사무총국의 사무 중 중요한 사항의 기획 및 입안에 참가하고, 관계 사무를 총괄 정리한다.
- 제3조의3 (家庭심의관) ①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가정심의관을 두고 재판소 技官으로 충원한다.
② 가정심의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사무총국의 사무 중 가정재판소 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기획 및 입안에 참가하고, 관계 사무를 총괄 정리한다.
- 제4조 (국장 및 과장) ① 국 및 과에 국장 또는 과장을 두고, 재판소 사무관으로 충원한다.
②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제5조 (국의 과장 및 실장) ① 국의 과 및 실에 과장(이하 ‘국의 과장’ 이라 한다) 또는 실장을 두고, 재판소 사무관 또는 재판소 기관으로 충원한다.
② 국의 과장 및 실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과 실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제6조 (국의 과장에 준하는 직) ① 국에 국의 과 또는 실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하는 직으로 국의 과장에 준하는 자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직은 재판소 사무관 또는 재판소 기관으로 충원한다.
- 제6조의2 (참사관) ① 국 및 과에 참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참사관은 재판소 사무관 또는 재판소 기관으로 충원한다.
③ 참사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 중 중요한 사항의 기획 및 입안에 참가한다.
- 제7조 (局府 또는 課府⁶⁾) ① 국 및 과에 局府 또는 課府를 둘 수 있다.
② 局府 또는 課府는 재판소 사무관으로 충원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한다.

6) ‘府’는 일본어로 ‘쯔끼’(つき)로 읽고, 局府 또는 課府에 소속되어 있는 판사를 ‘쯔끼 판사’라고 부름

■ 조직도(3과 7국)



5) 사무총국 국과별 담당 업무)

■ 비서과

- 최고재판소 재판관회의 및 재판관의 사무에 관한 사항
- 비밀에 관한 사항
- 公印의 보관에 관한 사항
- 문서의 접수, 송부 및 조정, 문서사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문서의 심사 및 進達에 관한 사항
- 의전에 관한 사항
- 관보게재에 관한 사항
- 섭외연락에 관한 사항
- 외국 사법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廣報과 - 홍보에 관한 사항

■ 정보정책과

- 정보화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입안, 조정에 관한 사항

7) 이하의 내용은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의 업무 분장을 규정하고 있는 ‘最高裁判所事務總局分課規定’에 따른 것임

- 정보시스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통계정보에 관한 사항

■ 총무국

● 제1과

- 재판소 및 변호사에 관한 법규, 그 외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
- 변호사, 재판소 내부 규율 및 사법사무처리 관련 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 사무총국의 조직 관련 규칙의 제정 등 사무총국 내의 종합연결에 관한 사항
- 외국변호사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재판소 및 재판소 지부,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 開廷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국회, 내각 및 변호사회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
- 합동 및 협의회, 위원회에 관한 사항
- 재판소時報의 간행에 관한 사항
- 최고재판소 대법정 및 소법정의 서무에 관한 사항
- 하급재판소 재판관지명자문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 재판소직원 재취직 감시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 사무총국의 다른 국 및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총무국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제2과

- 재판소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 재판소 직원(재판소 서기관, 재판소 속기관, 가정재판소 조사관, 가정재판소 조사관보, 집행관 및 廷吏는 제외)의 집무에 관한 사항
- 도서, 그 밖의 일반자료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최고재판소판례집 등 간행에 관한 사항

● 제3과 - 재판소 서기관, 재판소 속기관, 廷吏의 집무에 관한 사무

■ 인사국

● 임용과

- 보임 등에 관한 사항
- 재판관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항
- 임면, 그 밖의 인사이동 관련 심사 및 복무의 선서에 관한 사항
- 시험, 選考 등에 관한 사항
-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 인사국의 다른 과 및 직원관리관의 관장에 속하지 않는 사항

● 급여과

- 급여에 관한 사항(재판관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항 제외)
- 급여부에 관한 사항
- 恩級, 퇴직수당 등에 관한 사항
- 공무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 능률과

- 고과, 연수 및 표창에 관한 사항
-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 복무에 관한 사항
- 재판소 직원 퇴직수당심사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 조사과

- 징계 등에 관한 사항
- 신상조사, 영전 등에 관한 사항

● 공평과

- 이의신청사건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직원관리관 - 직원단체에 관한 사무

■ 경리국

● 총무과

- 고유재산에 관한 사항
- 경리국의 다른 과 및 후생관리관의 관장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주計과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결산에 관한 사항
- 최고재판소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
- 최고재판소의 보관금 및 보관유가증권의 출납 내지 보관에 관한 사항

● 영선과

-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실시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공사의 청부계약에 관한 사항

● 용도과

- 물품의 관리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 최고재판소 물품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최고재판소의 役務 조달에 관한 사항
- 최고재판소의 자동차 운영에 관한 사항

● 감사과

- 회계법규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회계에 관한 일반조사에 관한 사항

● 관리과

- 청사 등의 관리 및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 최고재판소의 청사 등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최고재판소의 전화교환 및 역무작업에 관한 사항

- 후생관리관

- 재판소공제조합에 관한 사항
- 아동수당 및 근로자 재산형성촉진에 관한 사항

- **민사국**

- 제1과

- 민사실체법규에 관한 사항
- 상사실체법규에 관한 사항
- 민사재판자료 등의 간행에 관한 사항
- 민사관계자료의 정비에 관한 사항
- 민사국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제2과

- 민사소송절차법규에 관한 사항
- 비송사건 및 민사조정절차법규에 관한 사항
- 위 절차 관련 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 위 절차에 의한 사건에 관한 사항
- 전문위원, 사법위원, 감정위원 및 민사조정위원에 관한 사항

- 제3과

- 민사집행, 보전진행 및 도산절차법규에 관한 사항
- 위 절차에 관한 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 위 절차에 의한 사건에 관한 사항
- 집행관에 관한 사항

- **형사국**

- 제1과

- 형사실체법규에 관한 사항
- 검찰심사회에 관한 사항

- 형사국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제2과

- 형사소송절차법규에 관한 사항
- 심신상실 등의 상태로 중대한 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
- 위 각 사항 관련 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 위 절차에 의한 사건에 관한 사항
- 정신보건심판원 및 정신보건참여원에 관한 사항

● 제3과

- 형사관계자료의 정비에 관한 사항
- 형사절차의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형사집무자료 등의 간행에 관한 사항

■ 행정국

● 제1과

- 행정, 노동 및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 행정, 노동 및 지적재산권 관련 자료의 정비에 관한 사항
- 행정, 노동 및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에 관한 사항
- 행정국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제2과

- 행정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
- 행정사건소송절차의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 행정사건재판례집 등의 간행에 관한 사항

● 제3과

- 노동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
- 노동 및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절차의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 노동관계민사재판례집 등의 간행에 관한 사항

■ 가정국

● 제1과

- 가사심판 및 가사조정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
- 인사소송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
- 가사심판, 가사조정 및 인사소송절차의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 위 절차에 의한 사건에 관한 사항
- 참여원 및 가사조정위원에 관한 사항
- 가사심판, 가사조정 및 인사소송 관련 관계기관과의 연락에 관한 사항
- 가사재판월보 등의 간행에 관한 사항
- 가정사건 관련 자료의 정비에 관한 사항
- 가정국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제2과

- 소년심판 및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성년의 행정사건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
- 소년심판 및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성년의 형사사건절차의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 위 절차에 의한 사건에 관한 사항
- 소년심판 및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성년의 형사사건 관련 관계기관과의 연락에 관한 사항

● 제3과

- 가정재판소 조사관 및 가정재판소 조사관보의 업무에 관한 사항
- 가정사건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사항

6) 사무총국의 구성원(판사 출신을 중심으로)

■ 개요

-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의 직원 수는 매년 변동이 있으나 800명에 조금 못 미침
- 2012. 9. 30. 현재 사무총국 근무 법관수는 63명으로서,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사무총장 1, 심의관 1
- 비서과: 과장 1, 참서관 1, 과부(課付, 카즈끼) 1
- 광보과(廣報課): 과장은 비서과장이 겸직, 과부(課付) 6 명이지만, 다른 국의 과장 등이 겸직(결국 광보과는 위 과에만 소속된 재판관이 없음)
- 정보정책과: 과장 1, 참서관 1
- 총무국: 국장 1, 참서관 2, 국부(局付, 쿄쿠즈끼) 4, 과장 3 (제1과장, 제2과장, 제3과장)
- 인사국: 국장 1, 참서관 3, 국부(局付) 2, 과장 3 {임용과장, 급여과장 겸 조사과장, 능률과장 겸 공평(公平)과장}
- 경리국: 국장 1, 참서관 1, 과장 2 {총무과장, 주계(主計)과장}
- 민사국: 국장 1, 참서관 1, 국부(局付) 4, 과장 2 (제1과장 겸 제3과장, 제2과장)
- 형사국: 국장 1, 국부 6, 과장 2 (제1과장 겸 제3과장, 제2과장)
- 행정국: 국장 1, 국부 4, 과장 2 (제1과장 겸 제3과장, 제2과장)
- 가정국: 국장 1, 심의관 1, 국부 4, 과장 3 (제1과장, 제2과장, 제3과장)
- 규칙상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사무총국의 직원은 '재판관 이외의 직원'이고 사무관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무총국의 간부 대부분 및 局府는 재판관이 맡고 있고, 그 외의 업무는 재판소 직원 시험에 합격한 사무관 등이 담당하고 있음
- 이는 1950년 최고재판소 규칙인 '사법행정상의 직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음
 -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입안, 그 외 사법행정상의 사무를 관장하는 직 중 최고재판소에서 지정하는 것은 판사 또는 판사보로 충원한다.", "전항의 직에 충원하는 판사 또는 판사보는 최고재판소가 명한다."
 - 위 규칙이 있기 이전까지 재판관이 사무총국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재판관에서 퇴직하여 사무관으로 전직하였는데, 이와 같은 신분의 변경으로 사무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사무총국 인사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 규칙을 제정하여, 사무총국의 간부나 局府는 재판관의 신분을 유지한 채 사무총국에 근무할 수 있게 됨

■ 사무총장

- 사무총장은 재판소법 제53조에 따라 최고재판소에 소속된 재판소 직원으로서, 최고

재판소 장관의 감독하에 사무총국의 사무를 관장함

- 사무총장은 재판관 이외의 재판소 직원이지만, 일반 직원 중에서 임명된 예는 없고 모두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고 있음
- 사무총장에 임명된 재판관은 재판실무 뿐만 아니라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의 局付、課長、局長 등 사법행정직을 풍부하게 경험한 판사가 대부분임. 다만 사무총장은 재판관 이외의 재판소 직원이기 때문에 최고재판소 사무총장에 취임한 판사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판관의 신분을 일시적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됨
- 사무총장은 직업재판관의 출세 코스로 인식되고 있는데, 사무총장을 일정 기간 근무 하였던 자는 대부분 고등재판소 장관⁸⁾에 임명되고, 그 중 대부분이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고 있음
- 최고재판소가 발족된 1947년부터 현재까지 17명의 최고재판소 장관 중 6명이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경력자였음

■ 사무차장

- 최고재판소에는 사무총장을 보좌하면서 사무총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무차장을 둘 수 있으나 공식인 경우가 많다고 함

■ 국장

- 관방계 국장
 - 총무, 인사, 경리국장 등
 - 주로 판사보 임관 후 단기간에 사무총국의 局付로 근무한 자 중에 선발되는 경우가 일반적
- 사건국 국장
 - 민사, 형사, 행정, 가정 등 재판 분야 국장
 - 사무총국의 局付로 근무한 적이 없고 사법연수소 교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조사연구능력을 평가받은 재판관 중에 선발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상대적으로 관방계 국장이 엘리트코스로 알려져 있는데, 사무총장은 예외 없이 관방계 국장 경험자 중에서 임용되고 있음

8) 副大臣 또는 準副大臣급 대우를 받음

■ 심의관

- 국장보다 다소 높은 재판관이 담당
- 각 과의 기능과 역할이 늘어나면서 조직을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으나 외부의 비판이 예상될 경우, 별도로 국과 개편을 하지 않으면서 '심의관'을 두어 조직을 관리함

■ 과장

- 사무총국의 중견간부인 과장은 비서과장, 광보과장, 정보정책과장 및 각 국의 과장 등 28명임
- 비서과장과 정보정책과장은 겸임하는 경향이 있음. 전부가 직업재판관은 아니지만, 직업재판관으로서 사무총국의 주요과장인 비서과장, 정보정책과장, 총무국 제1과장은 우정성, 외무성, 법무성 등 행정기관에 出向⁹⁾한 경험이 있는 자가 선발되는 경향이 있음

■ 局付

- 각 국 또는 각 과에 배속된 비교적 젊은 재판관으로서 실질적인 기획 내지 입안을 하는 업무를 담당
- 임용 형태를 보면, 종전에는 동경지방법재판소, 오사카지방법재판소 등 고등재판소 소재지의 지방재판소를 초임지로 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局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음. 최근에는 판사보 임관부터 局付까지 동경지방검찰청 검사, 재외공관, 농림성, 후생노동성 등으로 出向하여 행정경험을 한 후 局付로 임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주로 임관 후 10년 미만 판사보가 임용되고 있음

7) 사무총국에 대한 비판

■ 최고재판소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라는 비판

- 최고재판소 사법행정의 의사결정기관은 최고재판소 재판관회의임
- 그러나 실체는 최고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심의되는 사항의 안건은 거의 모두 사무총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사무총국이 작성한 재판관의 임용·재임용의 지명 리스트도 최고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수정되거나 거부된 적은 1건도 없었다고 함

9) 판사 신분에서 벗어나 행정 관료 등으로 몇 년 동안 근무한 후 다시 판사로 복귀하는 제도

-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숨어 있는 최고재판소 장관'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함

■ 사무총국이 출세의 등용문이 되었다는 비판

- '육상근무', '해상근무'
 - 일본 재판소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무총국을 '육상'으로 빗대어 '육상근무조'와 '해상근무조'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해상근무조'란 정년까지 지방의 재판소를 향해하며 돌 뿐 육상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올라오지 못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고,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근무하는 '육상근무조'보다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8)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대한 개선 의견

■ 재판관회의의 실질화

- 재판관의 자립, 재판관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급 재판소의 사법행정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인 재판관회의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 최고재판소 재판관회의가 단지 사무총국의 견해를 추인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하급재판소 재판관회의 역시 현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 중요한 안건을 의결함은 물론 이를 최고재판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지역재판관 인사자문위원회의 설치

- 재임용과 관련하여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밀실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 재판관지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위 위원회는 8개의 고등재판소 구역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음

9) 소결론

- 일본의 사법행정은 최고재판소 산하 사무총국에서 담당하며 우리의 법원행정처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
- 사무총국의 인원은 해마다 변동이 있으나 통상 800명 조금 못 미치고, 그 중 재판관은 2012년 현재 63명임
- 일본에는 재판관이 법무성, 외무성, 국회 등 행정이나 입법부서에서 일정 기간 근무

한 후 법원으로 복귀하는 출향관사 제도가 있으나, 이는 일단 법원을 퇴직한 후 검사 또는 일반 직원 신분으로 당해 업무에 임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법무부에서 일정한 사법행정 사무를 행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 법무부가 행하는 사법행정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4. 독일

1) 독일의 법원조직

■ 연방헌법재판소 등

-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로서, 독일의 사법조직은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법원 및 주법원으로 구성됨

■ 연방헌법재판소

- 위헌법률심판, 연방기관 간 또는 연방과 주 간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사건을 관장

■ 5대 연방법원(상고심)

- 헌법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권을 5개로 나누어 상고심을 연방법원이 담당하고, 1, 2심은 주법원이 담당함
- 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
- 상고심이 아닌 연방법원으로 특허법원이 설치되어 있음

■ 주법원

- 각 주별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고, 5대 연방법원에 대응하여 1, 2심을 담당하는 주법원이 설치되어 있음

2) 독일의 사법행정

■ 독일의 사법행정기관 : 연방 또는 주 법무부

- 독일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행정 조직이 없으며, 사법행정을 연방 또는 주의 법무부장관이 행함
 - 각 주의 경우 주 법무부장관이, 연방의 경우 연방 법무부장관이 연방 사법행정의 수장으로서 궁극적인 정치적 책임을 부담함

- 법원과 검찰의 행정업무를 모두 법무부가 행함
- 아래에서 보는 각급 법원 단위의 사법행정이 아닌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결정 등에 관한 사법행정 역시 법무부장관이 행함
- 각급 법원장은 소속 법관에 대한 감독과 해당 법원의 사법행정을 담당하지만 상급 법원 법원장 및 각 주 주무부처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연방법원의 경우 각 연방 주무부처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음
 - 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 연방 법무부장관
 - 연방노동법원 → 연방 노동부장관
 - 연방사회법원 → 연방 사회복지부장관
 - 예외 :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부의 직무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사법행정권한을 행사함
- 독일법관연맹은 2007년 연방대표자회의를 통해 법원의 독립과 사법의 근대화를 위해 독자적 사법행정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독자적 사법행정은 법원 관료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법원의 독립, 외국의 입법례 등에 비추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함
- 법관 인사 관련 위원회
 - 사법행정 중 일부 인사 관련 업무는 법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음
 - 법관사무분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일법관법은 법관사무분담결정위원회(Präsidium)를 두어 사무분담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법관인사에 대한 자문을 위해 법원별로 법관인사자문위원회(Präsidialrat)가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 법관의 임명 또는 선출 시에 해당 법관이 근무하게 될 법원의 법관인사자문위원회가 소관 연방 장관의 신청서류 및 평가자료를 기초로 의견을 제시함

3) 연방 법무부의 사법행정

■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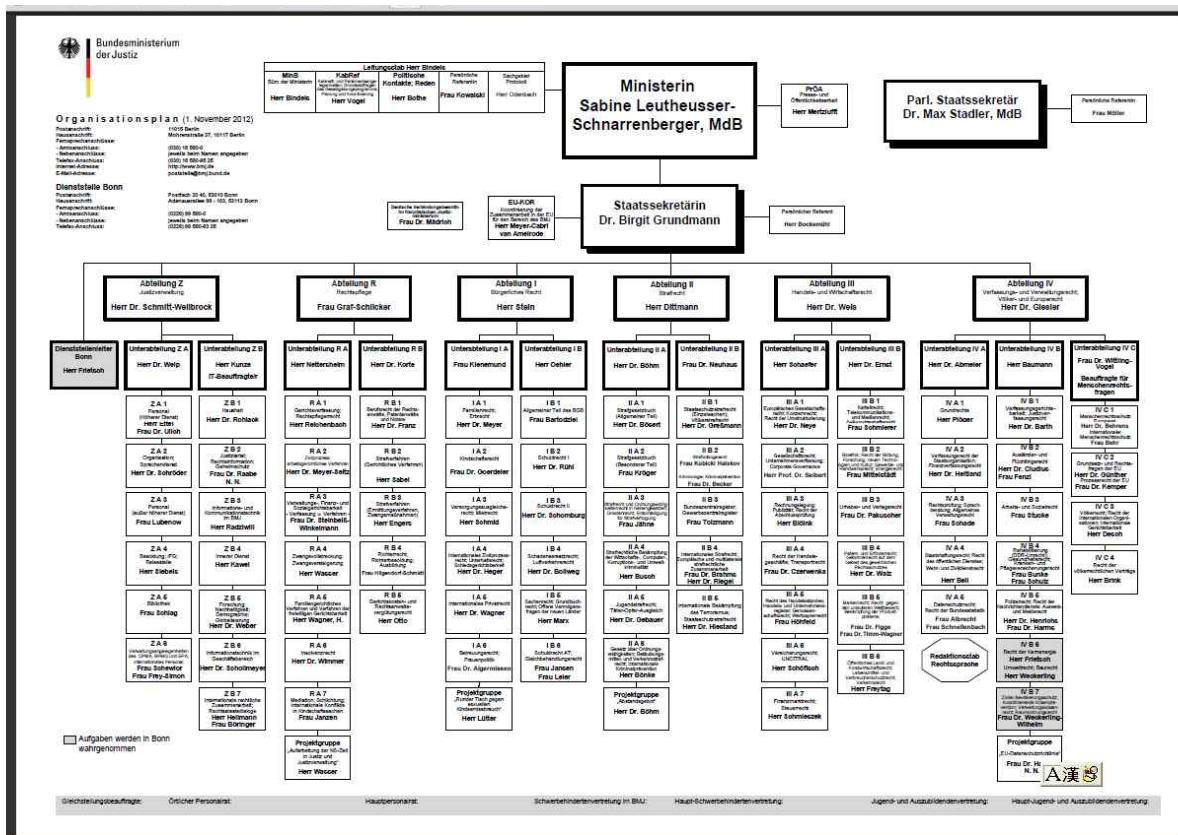
- 독일 연방법무부는 법무부장관 아래 장관을 보좌하는 2인의 차관(Staatssekretär)이

있고, 그 아래 총 6개의 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됨

- Directorate-General Z: 총무부(Justizverwaltung) - 인사, 서무 등을 담당
- Directorate-General R: 사법부(Rechtspfleger) - 법원제도(judicial system) 등을 담당
- Directorate-General I: 민사부
- Directorate-General II: 형사부
- Directorate-General III: 상법 및 경제법 분야 담당
- Directorate-General IV: 헌법, 행정법, 국제법, 유럽법 분야 담당

● 각 부서는 다시 2개의 하위 부서로 나누어지고, 각 하위부서마다 5 ~ 10명 정도의 담당관(Referate)이 있어 세부적인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독일 연방 법무부 조직도>



■ 기능

● Directorate-General Z

- 법무부 소관 연방법원(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특허법원) 등의 인사, 예산, 시설에 관한 사항 및 서무·지출, 전산·사법정보화, 국제협력 등의 업무

● Directorate-General R

- 법원과 검찰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 법원조직법, 법관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증인법 등이 규율하는 각 법조 세부 직역과 관련된 제반 업무
- 각종 절차법(민사, 형사, 가사, 행정절차법), 강제집행, 도산 관련 업무
- 법관의 급여 및 교육 관련 업무: 독일 법관아카데미(Deutsche Richterakademie) 관련 업무를 담당함. 독일 법관아카데미는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 공증인, 각 주의 공무원도 대상임
-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관련 업무

● Directorate-General I 내지 IV

- 각 해당 영역별로 ① 자체 내에서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하고, ② 다른 부서에서 작성한 입법안을 심사하며, ③ 구체적인 사법정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맡고 있음

■ 구성

- 연방 법무부에는 2010. 11. 현재 총 68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 266명이 법률가(lawyer)이며, 법률가 중 89명이 법관, 검사 또는 주의 고위공무원임
- 법관은 주 법원(1, 2심) 법관으로서 2년 내지 3년간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다 법원으로 복귀하는데, 파견근무 기간 동안에는 재판업무를 담당하지 않음

4) 주 법무부의 사법행정

■ 주 법무부의 인적 구성

- 주 법무부는 법무부가 채용한 일반 공무원과 법관, 검사 등으로 구성됨
- 주 법무부에 근무하는 법관은 주 법무부의 인사발령에 의해 법무부에서 3년 정도 근무한 후, 법원으로 복귀함
 - 2007년 어느 한 주 법무부 구성은 전체 공무원 179명 중 법관이 11명이었다고 함

■ 기능

- 주 차원에서 설치된 구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행정, 특허 등 각종 전문법원 소속 법관의 인사, 해당 법원장에 대한 직무감독 등을 담당함

5) 법무장관회의

- 매년 2회(연초 및 가을)에 법무장관회의(Justizministerkonferenz, 약칭하여 JuMiKo라고 함)를 개최하여 주요한 사법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음
- 이 회의에는 각 주 및 연방 법무장관이 참석하고, 주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함
 - 2012년에는 Hessen주에서 개최되었고, e-Justice, 전자상거래, 인터넷 범죄, 소셜네트워크의 법적규율, 보안감호수용제도(Sicherungsverwahrung) 등에 관해 논의하였음
- 법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Beschlüsse)은 연방 및 각 주 차원에서 사법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함

6) 소결론

- 독일의 사법행정은 연방 및 주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각급법원 단위의 행정은 법원장이 행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방 또는 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음
- 연방 및 주 법무부에는 주 법관이 파견되어 2~3년 정도 근무한 후 다시 법원으로 복귀하고 있음
 - 2010. 11. 현재 연방 법무부의 직원은 총 683명이고, 그 중 266명이 법률가(lawyer)이며, 법률가 중 89명이 법관, 검사 또는 주의 고위공무원임(그 중 법관의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이 어려움)
- 매년 2회 각 주별로 번갈아 법무부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한 사법정책은 위 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됨

5. 프랑스

1) 개요

- 헌법상 우리와 같은 사법부가 별도로 없고, 법원 조직은 법무부 소속으로서 법무부장관 산하의 한 기구로 되어 있음

-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재판(l'ordre judiciaire)과 개인과 공권력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행정재판(l'ordre administratif)이 이분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법 재판 사법관과 행정법원 판사의 양성 및 임관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
- 사법관(magistrat)은 판사와 검사를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직역간 상호교류가 활발하고, 법원과 검찰의 조직도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음
- 2008년 말 현재 프랑스 전체 사법관은 8,308명, 그 중 법무부나 법무부산하 국립사법관학교 등 재판 외 기관에 근무하는 사법관은 491명임(이는 법관과 검사를 합친 숫자임)

2) 사법행정기관 :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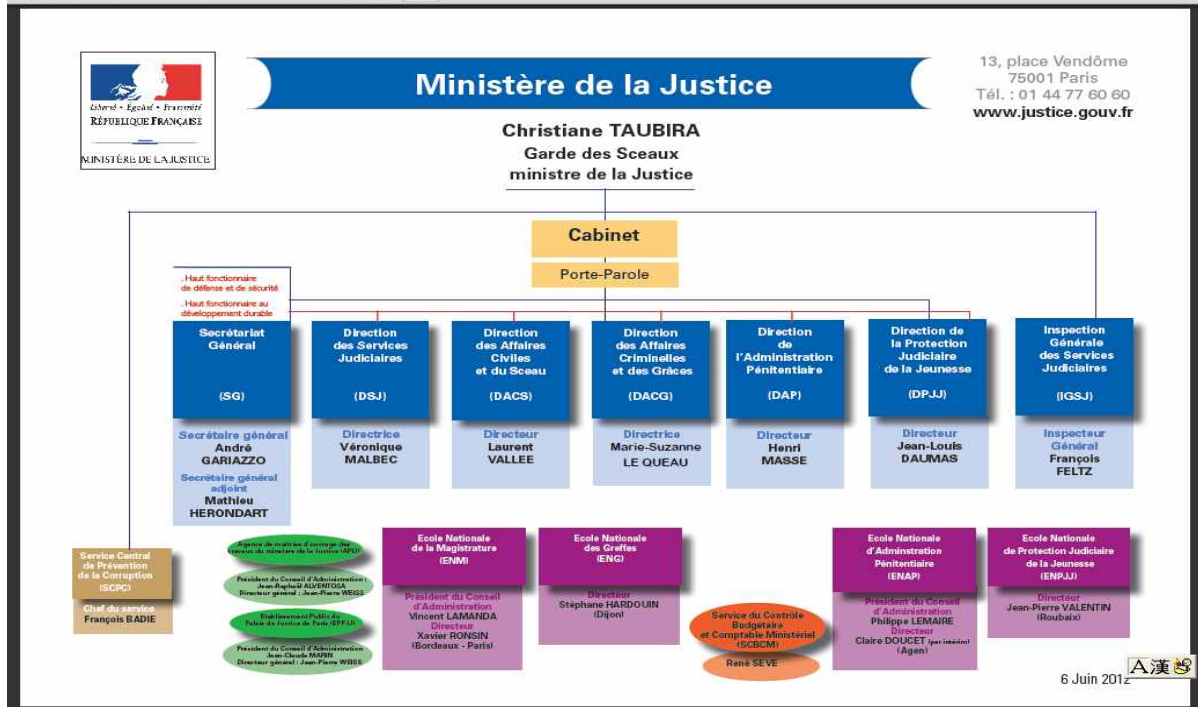
■ 개요

- 사법법원의 사법행정은 법원과 검찰 전반에 걸쳐 법무부가 관장함
 - 반면 행정법원의 사법행정은 1990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국사원으로 옮겨왔음
- 법무부는 사법행정에 관한 입법(법원조직, 실체법 및 소송법 등)과 예산, 사법관 인사(임명, 징계 제외), 사법정책의 수립·집행을 전반적으로 수행함

■ 조직

- 각 실국
 - 프랑스 법무부는 장관 산하 5개의 국(사법국, 민사국, 형사국, 교정국, 소년보호국)이 있고, 이를 총괄하는 사무총국(Secrétariat Général)이 있으며, 장관 직속기구로 파기원을 제외한 사법법원 전부의 직무와 조직에 관한 감사를 행하는 사법감사실(Inspection Général des Services Judiciaires)이 설치되어 있음
 - 그 중 사법국(Direction des Services Judiciaires)은 사법행정 관련 일반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
- 교육기관
 - 법무부 산하에 국립사법관학교, 국립서기학교, 국립교정행정학교, 국립소년보호학교 등이 설치되어 있음

<프랑스 법무부 조직도>



■ 기능

- 사법국은 사법행정부서로서 사법(법원, 검찰) 관련 조직·운영실무를 담당함. 그 산하에 사법조직기획과, 사법관 담당과, 법원서기 담당과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사법관과 사법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감사: 사법관의 임명, 전보, 승진 타기관 파견 등 업무
 - 사법부 관련 법령의 제·개정
 - 사법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사무총국은 법원을 비롯하여 법무부 전체 예산을 담당함
- 국립사법관학교는 신임 사법관 및 경력 사법관에 대한 교육, 사법관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교류 등 업무를 행함

3) 최고사법관회의

■ 개요

- 최고사법관회의는 사법관에 대한 인사 및 징계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헌법상 기관임

- 모든 사법행정권을 법무부가 행사하는 프랑스 사법제도하에서, 법관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하여 행정부의 독선을 견제하여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로서 기능함

■ 구성

- 전체회의
- 법원분과위원회: 파기원장이 주재. 국사원 위원 1인, 변호사 1인,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 2명씩 지명하는 6인, 법관 5인(계급별 법관회의에서 선출), 검사 1인으로 구성
- 검찰분과위원회: 검찰총장이 주재. 국사원 위원 1인, 변호사 1인,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 2명씩 지명하는 6인, 검사 5인(계급별 검사회의에서 선출), 법관 1인으로 구성

■ 기능

- 사법관 임명 제청
 - 최고사법관회의는 파기원판사,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함
 - 그 외의 법관 임명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대해 법원분과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며, 이 의견은 법무부장관을 기속함
- 사법관 징계
 - 법관에 대한 징계는 법원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함
 -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이 결정함

4) 사법고등연구소

■ 설립

- 사법분야의 독립된 연구·자문기관으로 1990년 설립됨

■ 기능

- 법과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
- 프랑스 법문화의 국제화

- 법무부의 사법정책 연구·수립 기능과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며, 법무부의 예산지원 감축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함

5) 소결론

- 프랑스는 사법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사법행정 전반을 법무부장관이 관장함
- 사법행정 중 법관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되 최고사법관회의의 제청이나 의견을 들어서 하고, 법관의 징계는 최고사법관회의 내 법원분과위원회에서 행함
- 법관과 검찰을 사법관으로 칭하고, 상호 업무 교류도 활발하며, 조직과 청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법무부 내에서 사법행정에 종사하는 사법관(법관, 검사 포함) 수는 2008년 말 현재 491명임

6. 결론

- 미국과 일본은 사법부 주도의 사법행정 조직이 있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행정기관인 법무부가 사법행정을 주관함
- 미국은 주요 사법제도 연구나 정책결정은 전체법관회의가, 당해 결정의 집행은 법원행정처가 하는 형태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두 기구가 긴밀한 협력하에 사법행정을 전담하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은 우리의 법원행정처와 가장 유사하고 규모는 더 큼
- 법무부가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도 법관이 법무부에 파견되어 사법행정 업무를 처리한 후 법원에 복귀하는 형태로 사법행정에 관여하고 있음

외국의 법관 감찰 검토

1. 검토 배경

-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검사의 비위에 근거하여 법관에 대하여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함
- 법관에 대한 감찰 여부, 방식 등에 관한 참고로 외국의 법관 감찰 현황을 검토함

2. 외국의 법관 감찰 활동

1) 대륙법계 국가

■ 독일: 직무감독

- 직무감독의 의의
 - 독일법관법은 “법관은 그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무감독을 받는다” “제1항의 유보하에서, 직무감독은 규정에 위배된 직무수행 방식을 질책하고, 직무를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훈계할 권한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독일법관법 제26조 제1, 2항)
 - 법관의 독립은 좋은 사법을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어야 함. 국가는 이를 위해 사법이 법에 맞게 작동하고 사안에 적합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피용자인 법관의 직무활동을 감시하고 잘못을 교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직무감독이라 함
- 직무감독권자: 법무부장관, 법원장
 - 특별한 형태의 직무감독 부서를 두지 아니하고 법원행정 담당자가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을 맡고 있음
 - 통상 법원장이 소속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을 행하지만, 이는 연방과 주 법무장관 등의 부하로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최상위 직무감독권자는 주무 장관임(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 사회복지부장관 등)
- 직무감독의 방식: 감시

- 직무감독의 방식으로서 법관 직무에 대한 감시는 영향력 행사의 시도가 아닌 이상 무제한으로 허용됨
- 감시의 구체적 예로서, 정기적 직무평가 또는 특별 직무평가, 사건번호 순으로 과태료를 조사하는 것, 직무상 행한 전화통화를 예산 통제를 위해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것 등이 거론됨
- 정기적 직무평가에 의한 감독은 물론, 어떤 계기가 있을 때에는 보조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특별한 직무 검사도 허용됨
- 다만 압행감찰과 같은 형태의 감시가 행하여 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 직무감독에 의한 조치
 - 직무감독상 조치로는 질책과 훈계만 허용되며, 그보다 강한 조치는 허용되지 않음
 - 질책과 훈계로 충분하지 않다면 직무감독권자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함. 징계 절차는 '가중된 직무감독사건'으로 이해되고 있음
 - 법원장이 법관에 대해 직접 할 수 있는 징계는 견책에 제한되고, 그 밖의 징계조치는 연방직무법원에 징계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함
- 직무감독의 한계
 - 법관적인 행위와 비법관적인 행위로 나누고, 전자에 관하여 다시 핵심영역과 외부 규율영역으로 나누어 감독의 한계 기준을 다르게 설정
 - 기본적으로 직무감독은 사법의 핵심영역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함
 - 비법관적인 활동에 대한 감독은 다른 공무종사자들에 대한 감독과 동일하지만 비법관적 활동 영역에 있어서의 직무감독 조치로 인해 법관의 인적 독립이 침해될 수도 있으므로 무제한적인 직무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직무감독은 긴장관계에 있음. 이에 독일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까지 폐지되지는 않고 있음

■ 프랑스

- 사법감사실(Inspection Général des Services Judiciaires)
 -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 사법감사실이 설치되어 있음

- 사법감사실은 대법원 판사급으로 보임되는 1명의 실장과 법무부 외에서 임명되는 1명의 부실장, 그리고 10명의 감찰관으로 구성됨
- 사법감사실은 평상시 파기원을 제외한 모든 사법법원과 법무부 산하 기관의 조직, 업무와 관련된 기능과 모든 제안 등에 대한 감사 및 평가를 실시함
- 사법감사실의 주된 역할은 사법관이나 법무부 및 각급 법원의 공무원들이 최고사법관회의가 관장하는 징계 절차의 토대로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행정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 법관 독립을 해치지 아니한 범위에서 일정한 조사 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방식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법무부 사법국

- 법무부는 사법국을 비롯한 5개의 국이 설치되어 있음
- 사법국 내 사법관담당과에서 법관규율·법관윤리에 관한 조사와 서류검토 등의 업무를 행하기도 함

▣ 일본¹⁰⁾

● 징계 등

-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산하 인사국 조사과에서 징계 업무를 담당함
- 문제가 생길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고, 암행감찰과 같은 형태의 감찰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함

● 일반 진정사건의 경우 사무총국 산하 광보과에서 처리를 담당함

● 재판관 탄핵

- 국회 내에 중의원, 참의원 각 7인씩 14인으로 구성되는 탄핵재판소를 두고 있음
- 탄핵 소추는 중의원, 참의원 각 10인씩 20인으로 구성된 재판관소추위원회가 행함. 위원회는 파면 사유에 관하여 조사한 후 소추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탄핵재판소에 소추장을 제출함
- 재판관에게 직무상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직무를 심히 태만하였을 때, 또는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위신을 현저하게 상실한 비행이 있을 때

10) 일본 사무총국 소속 재판관에 대한 구두 문의 결과를 기초로 한 것임

탄핵에 의해 파면될 수 있음

- 일본에서는 재판관에게 우리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행이 있을 경우 국회가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 2008년 말까지 8건의 재판관 탄핵소추가 있었으며 그 중 6건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음(아래 위키피디아 자료 참조)

현재까지 파면소추된 재판관

소추일	판결일	성명	당시의 현직	주된 소추사유	판결	자격회복일
1948년 7월 1일	1948년 11월 27일	야마노 준이치(天野庸一)	시즈오카(静岡) 지방재판소 히마마쓰 시(浜松) 지부 판사	물자의 압거래	불파면	
1948년 12월 9일	1950년 2월 3일	데라사코 미치타카(寺達達隆)	오쓰키(大月) 간이재판소 판사	지인에게의 가택수사를 시사	불파면	
1956년 8월 30일	1956년 4월 6일	다카이 스미오(高井住男)	오비히로(帯広) 간이재판소 판사	약식명령 청구권을 효력을 잃게함	파면	
1957년 7월 15일	1957년 9월 30일	데라사코 미치타카(寺達達隆)	아쓰기(厚木) 간이재판소 판사	당사자로부터 술과 음식 따위의 접대를 받음	파면*	1963년 2월 8일
1977년 2월 2일	1977년 3월 23일	기토 시로(鬼頭史郎)	교토(京都) 지방재판소 판사보 겸 교토 간이재판소 판사	총리에게 위조 전화(電貨)	파면*	1985년 5월 9일
1981년 5월 27일	1981년 11월 6일	다니마이 가쓰유키(谷盛克行)	도쿄(東京) 지방재판소 판사보 겸 도쿄 간이재판소 판사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으로부터 물품 접대를 받음	파면*	1986년 12월 25일
2001년 8월 9일	2001년 11월 28일	무라키 마사히로(村木保裕)	도쿄 지방재판소 판사 겸 도쿄 간이재판소 판사	아들매춘	파면	
2008년 9월 9일	2008년 12월 24일	시모야마 요시하루(下山芳晴)	우쓰노미야(宇都宮) 지방재판소 판사 겸 우쓰노미야 간이재판소 판사	스토커 행위	파면	

* 나중에 자격회복 재판에 따라 법조인 자격을 회복

2) 영미법계 국가

■ 미국

- 미국 연방법은 진정(complaint)의 제기로 인한 연방법원에 대한 일련의 조사, 징계, 탄핵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¹¹⁾
 - **진정의 제기:** 연방법원 판사가 효과적이고 신속한 직무 수행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정신적·육체적 이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서면으로 항소법원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법원서기는 진정서를 항소법원장에게 인계하고, 해당 법관에게도 사본을 교부함
 - **약식조사:** 항소법원장은 진정을 신속히 검토한 후 약식조사(limited inquiry)를 행하여 ①정식조사 없이 적절한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및 ②진정서 기재 내용이 순전히 사실이 아니거나 조사해도 밝혀낼 수 없는 사항인지를 결정함. 이를 위해 항소법원장은 피진정 법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위 답변서는 진정인에게 제공되지 않음. 항소법원장은 진정인, 피진정 법관, 또는 당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물을 수 있고, 관련된 서류를 조사할 수 있음

11) 28 USC §351 이하

- **항소법원장의 기각:** 항소법원장은 당해 진정이 방식에 맞지 않거나 판결 또는 결정의 실제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비위가 있었다는 소명이 없거나, 이미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졌거나 사정 변경으로 시정조치가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진정을 기각함
- **특별위원회:** 항소법원장이 진정을 기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과 주장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를 구성함. 특별위원회는 가능한 광범위한 조사를 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항소법관회의에 제출함
- **항소법관회의:** 항소법관회의는 사안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하거나, 진정을 기각하거나, 적절한 처분을 내림. 이 처분에는 일정 기간 사건배당 중지,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자발적 사임 권고 등임. 항소법관회의는 재량에 따라 사건을 전체법관회의에 회부할 수 있음. 항소법관회의가 피진정 법관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전체법관회의에 회부하여야 함
- **전체법관회의:** 전체법관회의는 필요하면 스스로 조사를 하거나, 적절한 처분을 하며, 탄핵사유가 인정되면 하원에 사건을 이첩하여 탄핵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미국 연방법은 진정으로 인한 법관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원장 기타 사법행정 기관에 의한 법관에 대한 감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실제 그와 같은 사례가 있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음
- 미국에는 연방감사관실(Inspector General)이 있어 대부분의 연방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내부고발자 보호, 공금의 적정한 사용, 법규의 준수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연방감사관실의 감사 대상 기관은 연방법무부, FBI, CIA, 암트랙, 재무부 등 대부분의 연방기관이 해당되지만, 사법부는 감사관실의 감사 대상이 아님
 - 연방법원의 신뢰가 실추된 것을 비판하면서 그 회복 방안으로 연방 사법부를 감사관실 감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¹²⁾ 미국 연방법관들은 이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함. 이에 의하면 연방 법관에 대한 진정은 99% 기각된다고 함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 영국

12) Ronald D. Rotunda, Judicial Transparency, Judicial Ethics, and a Judicial Solution: An Inspector General for the Courts, Loyola University Chicago Law Journal, Winter 2010(41 LYUCHILJ 301)

- 영국의 경우 법관진정위원회(Office for Judicial Complaints)에 서면으로 법관을 고발할 수 있고, 고발이 이유 있는 경우 당해 법관의 의견을 듣고 조사법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킬 것인지 결정함
- 고발이 있기 전에 암행 또는 예방적 감찰을 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 호주와 뉴질랜드에도 자체적인 비위 적발을 위한 법관 감찰 활동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호주 연방,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ttee)에 법관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면 필요한 경우 조사에 착수함
- 뉴질랜드는 법관윤리담당관(Judicial Conduct Commissioner)에 진정을 제기하면 필요한 경우 조사에 착수함

3. 결론

- 대륙법계 국가
 - 독일은 법관의 독립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법행정권자가 직무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프랑스는 법무부장관 아래 사법감사실을 둬으로써 진정 제기 전에 사법부가 자발적으로 직무상 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찰(감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징계절차에 의한 조사, 탄핵을 위한 조사 외에 감찰은 하지 않는다고 함
 - 국민이 법관에 대한 비위 신고도 할 수 있으나 이는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서 감사의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임
- 영미법계 국가
 - 모든 국민에게 법관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법관이 국민들로부터 감시를 받는 체제라고 할 수 있음
 - 법관의 직무 활동 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활동에 관하여 비위를 발견한 국민이 문제를 제기하면 조사를 하는 절차를 취함. 사전에 법관의 직무감찰을 벌이는 조직과 시스템을 마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1. 면담 개요

가. 일시, 장소: 2015. 6. 4.(목) 18:40~22:00 서울 종로구 소재 한식당 ‘○○○○○’ (○○○-○○○○): 청와대 수석들이 자주 찾는 한정식당

나. 참석자: 이정현 의원, 기조실장 외 2

2. 면담 요지

가. 사법부가 ‘창조경제’ 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설명

나.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 설명

- 이정현 의원은 유권자들로부터 상고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 관련 민원을 많이 받는다며 상고법원 도입안에 대한 공감 표명
- KBS 수신료 인상 등을 거론하며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안의 필요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

다. 비서실장 통화

- 21:00경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 현충일 또는 광복절 등을 계기로 VIP 접견 필요성을 전달
- 이병기 비서실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임

라. 정호성 부속실장 통화

- 21:50경 부속실장에게 직접 전화, 민정수석이 상고법원안에 반대하겠지만 VIP 접견 필요성을 설명 ⇒ 부속실장은 VIP 미국 순방 후 가능하겠다는 입장임

3. 기타

- 20대 총선에서 3선이 될 경우 당대표 도전 의사
- 송광사 일주문 예산 25억
- 지역구 활동: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지역구민에게 다가감, 지역 행사 시 단상 인사 변화

이춘석 법사위원 만찬 면담 결과 보고

1. 면담 개요

■ [일시.장소] 2016. 7. 19. 18:30 ~ 21:00, 서초동 일식집 정수사

■ 참석자

-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
- 법원행정처 차장,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 면담 주요 의제

- 정계 개편 등 정치권 현안
- 20대 국회 법사위 동향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정치 성향 등
- 사법부 현안 관련 의견 교환

2. 정계 개편 등 정치권 현안 관련

■ 2017년 대선 전후 정계 개편 예상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확실한 정체성을 표방하지 못하고, 계파간 다툼 등 혼탁한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구태 정치의 실망감만 주고 있는 상황
- 극우, 극좌 세력을 제외한 중도 성향 의원들이 결집한 제3의 정당 내지 정치세력 등장 불가피할 것

■ 최근의 검찰 위상 추락 관련

- 조선일보 등 여론의 공격을 BH(우병우 민정수석)와 검찰 수뇌부가 어떻게 방어해 나갈지가 관전 포인트
 - BH의 우 수석에 대한 보호 의지 강도에 따라 여론의 향후 공격 수위 결정 될 것으로 보임
- BH 등 여권에서는 법무부장관 경질로 위기 타개 시도 예상

- 법무부장관 경질 시, 후임 법무부장관 후보로는 최○○ 전 인천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음 (최 검사장은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정도의 큰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런 단점을 충성심 고취의 매개로 삼기 위해 인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 있음)

■ 손학규 전 의원 정계 복귀 관련

- 김종인 대표의 권유 등 우호적 환경 조성되어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 일선에 등장 예상
- 다만, 어느 정도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지, 대선 후보 출마 등 광폭 행보를 구가할 것인지, 그에 대한 민심의 반응이 어떨지 등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움

3. 20대 국회 법사위 동향

■ 법사위원장 인선 관련

- 20대 국회 하반기에는 새누리당이 무소속 의원들의 입당으로 제1당 지위를 회복하여 그 소속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맡고, 그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 몫이 될 가능성 높음
- 야당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이춘석, 정성호 의원 등이 유력

■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관련

- 야당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20대 국회 초반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야당의 존재감 및 위상을 드러낼 필요 있다는 공감대 형성되어 있음
- 이춘석 의원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소회 밝힘
 - 법원측에서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서울 법대 교수가 유력하다고 가볍게 언급하였고, 그에 대하여 이 의원은 별다른 이견 제시 없이 수긍할만한 후보라는 반응 보임

■ 8월 임시회 일정 관련

- 8월 중순 이후 임시회 개의 가능성 높음

- 8월 임시회 회기 중 이○○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예상

4.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정치적 성향 등

▣ 김종인 대표의 정치적 성향 등

-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정치적 감각 및 정치판 전반에 대한 예측 분석력이 탁월 ⇨ 한마디로 정치권의 고수
-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도 매우 양호
- 다만, 고집이 세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강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 관심 사항 등

- 궁극의 목표와 관심을 내년 대선 승리에 두고, 이를 위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음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약 20%의 스윙 보터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이 간발의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입안 및 정치 주도권 확보 방안에 몰두
 -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들의 입장과 달리 찬성에 가까운 입장 표명한 것도 내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
- 경제민주화에 매우 큰 관심
 - 재벌 해체 등 과격한 방식의 경제민주화가 아닌, 독일식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절충한 경제민주화 선호

5. 사법부 현안 관련

▣ 서울파산법원 설치 관련

- 법원측에서 서울에 독립된 파산법원 신설 필요성 언급

- 대법원장님 임기 말기 최대 중점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 ⇨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 전국의 도산 사건 수가 15만 건에 달하고 있어, 적어도 서울 지역에 독립된 파산법원 신설할 필요성 큼
- 17대 국회 때부터 일부 법사위원들이 파산법원 설치를 요청해 왔던 만큼 그 설치 명분 충분함
- 특히 상시 구조조정 등을 통한 기업의 체질 개선 및 국가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신속 대처를 위해 전문성 가진 파산법원의 설치, 운영이 긴요함
- 법원의 조직 확장 관점에서 무조건적 반대 입장 취하는 검찰 출신 의원(김진태 의원 등)들에 대한 설득이 관건

● 이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 약속

- 파산법원 신설 필요성 및 그 긍정적 순기능에 공감
-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찬성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은 검찰 출신이므로 김진태 의원을 설득하는 역할도 맡아 줄 것으로 기대

■ 사법부와의 협조적 유대관계 지속 함의

- 많은 법사위원들이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 기능의 중요성과 우수한 역량, 국가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고 큰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함
- 향후 대법관 인사청문회, 사법부 예·결산 심사, 파산법원 설치 등 중요 사법정책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력 의사 밝힘

상고심 기능 강화(2)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3. 11. 28.

실무지원단



1. 상고법원안 도입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효과

▣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 및 정책법원 기능 강화

- 상고법원을 설치함으로써 대법원은 상고심의 고유 기능인 법률심 기능과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적합한 사건을 직접 선별하여 처리하게 됨
- 대법원은 적정한 사건 수를 유지함으로써 중요한 사건은 대법관들이 깊은 사색과 숙려,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됨
- 대법원 공개변론 및 그 중계방송 등 국민의 의견을 직접,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특히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됨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법원은 기본적인 헌법 가치를 반영하여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질서를 확인하는 최고법원의 역할을 확고히 함

▣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강화

- 그동안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던 권리구제기능은 상고법원과 분장하게 됨
- 그 중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과 같이 중요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상고법원은 나머지 대다수의 사건을 적시에 처리하게 됨
- 상고법원은 대다수의 상고사건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사건 처리에 있어 결론의 적정성과 절차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여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있는 판사들이 관련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
- 상고법원에서 심판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위반이나 판례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특별재심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함 ⇨ 이로써 법률 해석 통일 및 국민의 권리 구제를 더욱 강하게 보장할 수 있음

▣ 경륜 있는 법관에 의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 강화



- 국민들은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판사로부터 재판받기를 원함
- 상고법원 설치로 인해, 경륜 있는 원숙한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계속하여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경력자가 판사로서 재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임
- 결국 법원 전체적으로 경륜 있는 법관들의 비중이 늘어나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전체적인 법관의 역량 강화 및 이로 인한 하급심 강화

- 상고심 사건은 1심, 2심의 주장과 증거 및 판단이 망라되어 있어, 이를 검토, 연구하는 법관은 단시간에 사실관계 파악, 법률적 논리, 판례 및 재판 진행 경험에 관한 훌륭한 수련을 거치게 됨
- 상고법원이 설치됨으로써 대법원뿐만 아니라 상고법원에서도 상고사건을 연구, 검토하는 재판연구관을 경험할 기회가 생기게 되므로, 법원 전체적으로 보아 법관의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됨
- 법관의 역량 강화는 하급심 강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구제는 하급심 단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어 원뿔형의 안정적인 심급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됨

2. 추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판 검토

가. 대법관이 아닌 법관에 의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 데 대한 불만

-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대법관에 의한 최종적인 상고심 판단을 받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
- 그러나 상고법원안에 의할 경우에는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상고사건을 나누어 심판하므로, 대법원 심판을 받지 않는 사건은 상고법원이 최종심이 됨
-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대법관에 의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상고법원 재판에 대하여 최종적인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생각하



지 않을 수 있음 ⇨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한 제도라는 비판

▣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님

- 헌법은 제101조 제2항에서 대법원이 최고법원임을 선언하고 있을 뿐 모든 사건의 최종심이 대법원이라고는 선언하고 있지 않음.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맡겨둠
-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95카기41 결정, 헌재 2006헌마551 결정)

▣ 외국의 경우에도 최고법원에 의한 최종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아님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는 상고허가제, 상고수리제 등 상고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¹⁾ ⇨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고법원의 재판이 허용됨
- 독일, 일본 등에서는 경미사건에 관하여 상고심을 최고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으로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국민 감정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극복할 수 있음

- 2010년 사법신뢰증진방안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당시 최종 심급에서의 재판의 주체에 관하여, 일반 국민은 ① 가벼운 사건은 고위 법관으로부터 최종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 57.7%, ② 최종 재판은 반드시 대법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의견 30.4%, ③ 모르겠다는 의견 11.9%를 나타냈음 ⇨ 대법관으로부터 최종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음

1) 각국의 상고제한제도에 대하여는 아래 3.항 참조



- 상고법원안 제1안에 의하면 모든 상고사건이 대법관에 의한 심사를 거치게 되고, 제2-1안과 제2-2안에 의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송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대법원이 신청 허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특별재심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법관에 의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는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음
- 재판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법관을 상고법원에 배치하고, 전문재판부를 설치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며, 대다수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데에서 상고법관의 역량 강화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일부 국민의 인식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임

나. 특별재심 절차로 인하여 4심제로 오인될 우려

- 상고심인 상고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재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4심제가 된다는 비판
- 4심제로 인해 사건의 종국적인 해결 및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소송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비판

■ 4심제가 아님

- 특별재심은 헌법 위반이나 판례 위반 등의 사유로 엄격히 제한하여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특별재심 절차가 있다고 하여 4심제가 되는 것이 아님
- 일본의 경우 간이재판소에서 1심 판단을 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지방재판소, 상고심은 고등재판소에서 담당하고, 상고심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고재판소로의 “특별상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들어 4심제라고는 하지 않음
- 미국의 경우 각 주 최고법원 사건에 관하여 조약이나 연방 법률에 관련되거나 주 법률이 연방 헌법, 조약, 연방 법률에 저촉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에 상고가 허용되는데, 이를 두고 4심제라고 비판하지는 않음



▣ 절차가 지연되거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특별재심을 거치는 사건에 있어서도, 상고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상고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사건의 종국적인 해결이나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구제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은 아님
- 특별재심으로 인해 소송비용이 추가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상고법원 신설로 인해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이 강화되고, 상고법원에서의 권리구제기능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만은 볼 수 없음

다. 상고법원 설치로 인한 비용 및 인적 자원에 관한 문제

- 상고법원을 신설하고 상고법관 및 재판연구관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고, 경험이 풍부한 많은 수의 법관이 상고심에 배치됨으로써 하급심이 약화된다는 비판
- 고등부장 이상 경력자에 의한 상고법관 보임은 법원의 고위직 자리 늘리기로 보일 수 있고, 다른 기관과의 형평에도 반한다는 비판

▣ 상고법원의 설치로 얻을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이익이 상당함

- 현재 대법원의 사건 부담은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상고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상고법원 설치로 인하여 상고심 재판받을 기회 확대, 신속한 상고심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 활성화 등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이익 또한 지대함
- 그러므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비용은 대법원의 기능 강화 및 충실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임

▣ 상고법원에 경륜이 있는 상고법관을 배치함으로써 하급심 강화 및 사법 신



퇴 향상을 가져옴

- 경험이 풍부한 법조경력자로부터 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미 입법적으로 실현된 국민의 의사임 ⇨ 법조일원화
-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상고심에 경험이 많은 법관들을 배치함으로써 법원 전체적으로 경륜이 있는 판사들이 정년까지 재판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됨
- 또한, 상고법원의 재판연구관을 거친 판사들이 하급심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이 됨으로써 사법 신뢰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음

3. 각국의 상고제도

가. 미국

■ 심급제도와 상고심

- 미국연방헌법 제3조는 연방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심 관할권이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심급제도에 대한 입법 재량 인정)
- 1925년 법원조직법 이후에는 상고심 관할의 행사에 관해 연방대법원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음

■ 연방대법원의 상고허가제

- 연방항소법원 사건이나 주 대법원 사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음
- 연방대법원은 연방대법원 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연방법상의 중요한 쟁점을 제시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가함

■ 각 주 대법원의 상고허가제

- 각 주마다 고유한 상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 대법원은 상고허가제를 채택하여 주 항소법원에서 상고된 사건 중 중요한 사건만 선별하여 심



리하고 있음

나. 영국

■ 상고허가제

- 영국은 상소심 재판권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고심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상급법원에 상소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즉 상소허가신청권만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항소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항소법원에서 상고를 불허하는 경우 대법원에 다시 상고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항소허가제

- 영국은 항소심 역시 항소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항소는 원심 내지 항소심 법원의 항소허가결정이 있어야 허가됨
- 대체적으로 보아 항소허가신청 사건의 40% 정도가 허가됨
- 나야가 5,000파운드 이하의 사건에 대하여는 중대한 절차 위반 또는 법령 오해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항소조차 할 수 없음

다. 독일

■ 민사사건의 상고허가제

- 민사사건은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상고가 가능하게 됨(항소법원이 상고를 허가하였거나, 상고불허가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상고법원이 상고를 허가한 경우)
- 상고는 사건이 근본적인 의미가 있거나 법 형성 또는 판례의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됨

■ 형사사건의 상고심



- 형사사건에서는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음
- 형사사건에서 상고심의 관할은 원심법원에 따라 정해짐
 - 1심이 구법원인 사건은 항소심이 지방법원, 상고심이 고등법원이 됨
 - 1심이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인 사건은 바로 상고심이 연방일반법원²⁾이 되어 2심급제로 운영되고 있음

라. 프랑스

■ 파기원의 사건심사

- 최고법원으로 파기원이 있음
- 파기원으로서의 상고사유는 법률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파기원 내에 사건심사부를 두어 적법한 상고 대상이 아니거나 명백히 근거 없는 상고인 경우 각하함
- 민사사건의 경우 약 1/3 가량이 사건심사부에서 종국 처리됨

■ 파기원에 대한 불복신청의 의미

- 프랑스 민사소송에 있어서 파기원에 대한 불복신청은 상소의 일종이라기 보다는 판결에 대한 예외적이고 특별한 불복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3심제가 아니라 2심제로 평가되고 있음

■ 항소 제한

- 민사 사건 중 소가 3,800유로, 노동법원 사건 중 소가 4,000유로 이하 사건은 지방법원의 단심제로 운영되고 항소는 불가능함. 다만, 법률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는 가능함
- 선고된 벌금이 150유로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소가 불가능하고, 다만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상고 가능함

마. 일본

2) 일반재판권(민사, 형사) 분야의 연방최고법원이다. 독일은 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의 5개의 연방최고법원이 있고, 각 업무영역에 대하여 재판의 최종심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 형사사건 상고심의 상고수리제

- 헌법 위반, 판례 저촉에 대하여는 권리상고가 인정되나, 그 밖의 법령위반 문제는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고재판소의 재량으로 상고를 수리함
- 다만,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 등으로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에 의하여 원판결 파기 가능함

▣ 민사사건 상고심의 상고수리제

- 헌법위반이나 중대한 절차법 위반에 대하여는 권리상고가 인정되나, 그 밖의 일반 법령 위반 중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고재판소가 재량에 의하여 상고를 수리함

▣ 고등재판소가 상고심인 경우

- 원칙적으로 1심은 지방재판소, 항소심은 고등재판소, 상고심은 최고재판소로 구성됨
- 다만, 민사소송사건 중 1심이 간이재판소인 경우 항소심은 지방재판소, 상고심은 고등재판소가 됨



공무집행방해 관련 최종 보고 (대외비)

2016. 4. 12.

양형위원회

I. 기존 논의의 경과

1. 2016. 3. 4. 검찰 전문위원 주장 (⇒ 별첨 1 참조)

가.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현행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주장

- 특별가중인자를 2개 항 추가하면서 그 중 하나로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시 & 이에 대한 양형인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수사 방해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경찰 등 공권력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정복 입은 경찰관, 현장 근무 공무원에 대한 범행인 경우
 - 복면 등 착용하여 신원을 은닉 또는 가장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근거

- 민주총궐기대회(15. 11. 4)로 구속된 26명 피의자 중 15명(57.6%)이 복면을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함.
- 집회·시위 등에서 복면을 착용하는 경우,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되거나 폭력성이 가중될 위험을 사전에 억제할 필요성
- 미국(알라바마 등 15개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에서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복면금지법)하고 있음을 참작

2. ‘복면 착용’의 금지 내지 처벌 관련 입법례

가. 미국

▣ 관련 법률의 내용

- 연방법률
 - 제18장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241조 타인의 권리침해를 위한 음모
 - 2명 이상의 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장된 권리 및 특권의 행사를 막거나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신원을 숨긴 채 고속도로 및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나타나는 경우, 벌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뉴욕 형법



- §240.35 배회
 -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복장 및 얼굴분장으로 신원을 숨긴 채 공공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배회(loitering)죄로 처벌한다.
 - 알라바마법
 - 제13a장. 형법
 - 공공질서 및 예절에 반하는 범죄
 - § 13A-11-9 배회
 -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공공장소에서 배회하거나 남아있거나 집회를 하는 자는 배회죄를 범한다.
 - 뉴멕시코 주 법률 및 법원규칙
 - 제30장 형법, 폭행 및 협박의 죄 §30-3-2. 가중폭행
 - 마스크, 모자, 폭행, 두루마기, 또는 얼굴이나 머리, 몸을 덮는 다른 어떠한 것을 착용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장하여 신원을 숨긴 채 다른 사람에게 폭행의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을 한 경우 가중폭행죄를 구성한다.
 - 일리노이 주 법률 및 법원규칙
 - 제720장 형법
 - 폭행 및 협박의 죄
 - 무기나 장치를 사용한 범죄, 폭행의 행위를 하는 자가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하여 후드, 두루마기 및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가중폭행에 해당한다.
- **연혁적 검토**



- 연방법률의 경우, 특정 메시지(예 : KKK)를 암시하는 복면을 쓰고 인종 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제정

나. 독일

■ 관련 법률의 내용

-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 집회와 행진에 관한 법률
- 신원 확인을 저해하고, 정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도가 인정되는 복장을 한 채, 옥외의 개방된 집회, 행진, 기타 개방된 옥외행사에 참가하거나 행사장으로 향하는 것 금지
-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 연혁적 검토

- 극우 나치주의자의 폭력시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다. 프랑스

■ 관련 법률의 내용

- Décret n° 2009-724 du 19 juin 2009 relatif à l'incrimination de dissimulation illicite du visage à l'occasion de manifestations sur la voie publique : 공공도로에서 시위 시 얼굴의 불법적 은폐의 처벌에 관한 데크레1)
- Loi interdisant la dissimulation du visage dans l'espace public : 공공장소에서 얼굴가리기 금지법(히잡, 부르카 등 착용금지법)
- 시위 및 일반 공공장소에서 복면 착용 금지
- 처벌 내용 : 벌금 3,000 유로 이하

■ 연혁적 검토

1) 명령 또는 법령을 뜻함



- 2009년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반대하여 북면시위대가 난동을 피운 후 제정
- 공공적인 장소에서 북면 착용 금지는 종교적 상징물의 착용(예: 이슬람 교도의 히잡)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라. 오스트리아

- 집회법(원문 표기는 찾지 못함) : 누구든지 집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식별을 저해하기 위하여 옷이나 다른 물품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숨기고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 다만 공공의 질서, 평온과 안녕에 대한 위험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북면금지가 적용되지 않음
- 처벌내용
 - 6주 이하의 구류, 720유로 이하의 벌금
 - 단, 북면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무장을 하거나, 정황으로 보아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물품을 소지할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60일 이하의 벌금형

마. 일본

- 일본에서는 북면 착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3. 가칭 ‘북면금지법’ 의 내용 및 법률제정 진행 경과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 (⇒ 별첨 2 참조)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 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면, 마스크 등의 북면도구를 착용하거나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얼굴 등을 보임으로써 신원을 노출하면 안 되는 부득이한 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북면도구를 착용할 수 있다.

제18조(참가자의 준수사항)

- ②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 제4항 제1호제2호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6. 제16조 제5항, 제17조 제2항 또는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복면도구를 착용한 경우에 복면도구를 제거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고도 따르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제16조 제6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또는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나. 진행 경과

■ 2015. 11. 25. 새누리당 ‘복면금지법’ 발의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단계 ⇒ 대법원에 법률안 검토 요청×

■ ‘복면금지법’ 관련 입법경위 및 반응

- 17대, 18대 국회 : ‘복면금지법’ 추진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함
- 헌법재판소 : 2003. 10. 30. 2000헌바67 등 사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정의하면서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고 판시
- 국가인권위원회 : 2009. 6. ‘복면금지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킬 것’ 이라는 의견을 냄
- 정의당·민변 공동 주최 : 2015. 12. 1. 국회에서 복면금지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4. 미국, 영국의 양형인자에 ‘복면’ 이 포함되는지 여부

■ 미국 연방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는 없음
- ‘가중폭행’의 경우, 폭행이 계획적 범행인 경우 범죄 등급이 2등급 상승 ⇒ 계획적 범행을 정의하면서 예시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



가중폭행의 정의

- 가혹한 폭행행위로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뜻한다.
 - (A)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 (B) 심각한 신체적 상해가 있는 경우(중상해)
 - (C) 교살 및 질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및 그러한 시도가 있었던 경우
 - (D) 또 다른 중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는 경우

계획적 범행

단순히 범죄의 실현을 위한 전형적인 계획을 짜는 행위 이상을 말한다. 그 범죄사실을 숨기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있는 경우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목격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 범행의 때를 연기하는 것은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에,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유인하거나 신분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등은 계획적 범행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양형기준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 만 별도의 양형기준 존재, 경찰공무원 외 공무원에 대한 폭행 ⇒ 일반 폭행범죄 양형기준의 가중인자로 반영
- ‘범행의 명백한 사전준비’ 를 가중인자로 두고 있으나, 신분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등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음

5. 대응책 검토 (초기)

가. 검찰 주장의 타당성 검토

■ 긍정적인 면

- 처음부터 불법·폭력시위 등을 계획할 목적으로,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 등을 착용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해 행위불법 이 높음
- 복면은 범행 후 추적,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이므로 가별성 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부정적인 면

- 검찰 전문위원이 제안한 양형인자 설정은 체계적, 내용적으로 부적정



- 현 양형기준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 ‘계획적 범행’에 이미 포함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폭력 등 다른 범죄에도 위 ‘계획적 범행’이 규정되어 있는데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하여 새로이 양형인자를 정하는 것은 부적절 ☞ 다른 체계로 규정함이 상당함
-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우려됨
- 불법집회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집회에 참가하는 하되 참가 여부에 대해 신원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참가자들을 위축시킨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함
- 최근 ‘복면금지법’ 제정 관련,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되어 양형기준에 “복면 착용”을 가중요소로 넣을 경우, 양형위원회가 BH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비추어질 소지 ⇒ 양형위원회의 중립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음
- 강도, 절도, 유괴, 성범죄 등에서 복면 등 착용이 가중요소로 되어 있지 않음. 다른 범죄에 없는 ‘복면 등 착용’을 공무집행방해 범죄에만 추가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
- 현행 실무례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복면 등의 착용이 전형적인 사안이거나, 특별히 가벌성이 요구되는 행태로 보이지 않음
- 집회·시위, 테러 등의 범죄에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의 일반적인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성이 적음²⁾³⁾



- 양형인자의 정의를 적절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움

- 가중처벌하려는 행위는 불법집회를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과정에서 신원을 은닉하기 위해 복면을 착용한 부분인데, 이를 가중요소로 적절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음

나. 대응책 (초기)

- **양형 정책상 '복면 착용'을 '비난할 만한 사유'의 정의규정 중 하나로 추가하는 것은 찬반양론이 모두 가능함**

- 복면 관련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든 양형기준의 내용으로 삽입하는 것은 BH의 의도라고 볼 수 있고,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검찰총장과 자신의 향후 입지까지 언급하며 강력 요청하고 있음
-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복면 착용'을 양형기준상 특별가중 양형인자로 추가하였다는 취지로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할 것임

- **양형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 확보가 최우선임**

- 이전과 같이 비공개로 전문위원회의 및 양형위에서 의결이 될 경우, 결론이 어느 방향으로 정해지든 보수, 진보 양쪽에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절차적 공정성 담보가 중요함
- 전문위원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양형위원회의에서 전문가 토론을 거치는 모양새가 제시될 수 있음 ⇒ 즉 위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관계자의 개입을 최소화 한 상태에서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
- 검찰 양형위원의 정식 요청에 따른 전문가 의견 청취 여부를 의사결정 형식으로 진행

- **전문가 출석, 간담회 등의 근거**

- 2) 판결문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사건명 '공무집행방해'로 검색(2012년 ~2014년)한 6,163건 중 집회 관련 건수는 24건
- 3) 판결문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사건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으로 검색(2012년 ~2014년)한 404건 중 집회 관련 건수는 29건



● 법원조직법

제81조의8(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규칙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① 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II. 검찰과의 의견 조율 및 대처 방안

1. ‘전문가 출석 후 의견 청취(안)’ 에 대한 검찰의 입장

▣ 검찰 의견 ⇒ 전문가 출석에 반대

- 2016. 3. 8. 검찰 전문위원 이○○, 김○○ 검사가 운영지원단 방문
- “복면 착용”은 복면금지법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강조 ⇒ 외부 전문가가 양형위원회에 출석하여 논의할 경우, 여론, 시민단체 등에서 관심 및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공론화 없이 조용하게 양형인자로 포함시키는 결론을 내고자 함
- 서면으로 전문가의 질의, 응답 받는 절차는 수용 가능함
- 다만, 양형위원회 회의 중 위원들의 의견으로 전문가 출석, 간담회, 토론



회 등이 제안되어 통과된다면 어쩔 수 없음 ⇒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죄 의결이 지연되어도 감수 가능

■ 검찰 의견의 문제점

- 검찰은 “복면 등 착용” 을 양형인자로 포함되면, 이후 언론에 보도확할 계획임
 - 미리 공론화 될 경우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양형인자 반영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공론화 없이 양형인자 반영 ⇒ 양형위원회의 중립성 훼손’ 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음
- 양형위원회의 중립성 훼손은 대법원의 중립성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 ⇒ 야당, 시민단체 등에서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 방식에 문제제기 가능성
- 서면 질의, 응답은 현재 전문위원 전체회의, 관계기관 의견조회로도 대체 가능하므로, 의미 없음

2. 검찰 주장에 대한 양형위원회 최종 입장

가. 상정 가능한 방안

- ① 검찰 측 의견과 같은 특별가중인자 추가 방안
- ② 특별가중인자를 추가하되 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공용물무효·과과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범죄에만 위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 ③ 현 양형기준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 ‘계획적 범행’ 정의규정에 ‘복면’ 을 추가 기재하는 방안
- ④ 현 양형기준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 ‘계획적 범행’ 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안



나. 내용적 측면에서의 검토 ⇨ 가중인자 및 정의규정의 변경에 신중 요

- 현 양형기준의 계획적 범행(일반양형인자)의 정의규정에 이미 포함
- 어떤 형태로든 ‘**복면**’ 이라는 단어가 추가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임
-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문제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 복면 착용이 처벌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으로 처벌
- 양형기준연구반(2016. 1. 11.) 회의에서 ‘복면 등’ 을 양형인자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하여 ‘부적정’ 의견이 유력하게 제시됨

다. 절차적 측면에서의 검토

▣ 양형위원회 의결 후 예상되는 문제점

- 복면(가중인자) 제외의 경우 ⇨ 청와대, 검찰 등과의 관계 악화
- 복면(가중인자) 포함의 경우 ⇨ **대법원(양형위)의 중립성 문제** 제기

▣ 대책

- 양형위원회 논의 과정 부각에 주력
- 효과

- ▣ 양형위원회가 대법원과 분리된 독립위원회임을 강조
- ▣ 심도 있는 논의 다수결에 따른 결론인 점을 부각



**대법원의
정치적 부담
경감**

라. 결론 : 구체적 방안

- ▣ 법관 양형위원이 아닌 양형위원(교수, 변호사, 학식.경험)이 민감한 문제임을 이유로 심층적 검토를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자는 제안
- 위원장이 이를 수락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의견청취 진행



- 검찰에서도 회의 중 양형위원의 제안은 수긍한다는 입장임

▣ **전문가 의견 청취를 가정할 경우, 추후 진행 일정**

- 개요

- 2016. 4. 18. 제72차 양형위원회에서 검찰 양형위원의 ‘복면’ 관련 의견 진술 ⇒ 非법원 타 양형위원의 전문가 의견 청취 제안
- 2016. 5.경 [전문가 의견청취] 등이 포함된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수정 논의를 위한 양형위원회의 개최 ⇒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파급력 최소화

- 일정상 문제점

- 2016. 7. 1. 근로기준법, 석유사업법, 과실치사상 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에 맞추어 양형기준 책자 발간 예정
-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수정을 위 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움 ⇨ 대책 : 양형기준 책자 발간 후 공무집행방해 부분 수정 양형기준을 별도로 소책자로 제작하여 배포

- 전문가 후보(안)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검찰 추천 1인	제3의 위원 추천 1인
김○○ 동국대 법학 교수	박○○ 고려대 교수
이○○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한○○ 건국대 교수
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끝]



특검법 통과 이후 검토

2016. 11. 19.

1. 특검법 통과 이후 주요 일정

주체	주요 일정	기간	기한	비고
국회의장	법률안 정부 이송			'16.11.18.(금) 이송 완료
대통령	법률안 공포	15일*	'16.12.03.(토)	매주火 국무회의(11/22 or 11/29)
	법률안 시행		上同	공포일부터 시행(특검법 부칙§1)
국회의장	대통령에 특검 임명 요청	3일	'16.12.06.(화)	
대통령	野2당에 특검 추천 의뢰	3일	'16.12.09.(금)	
野2당	특검 후보자 2명 추천	5일	'16.12.14.(수)	
대통령	특검 임명	3일	'16.12.17.(토)	특검법에 民§161 규정 無
특검	준비기간(수사 가능)	20일	'17.01.06.(금)	
	수사기간	70일	'17.03.17.(금)	
	수사기간 연장	30일	'17.04.16.(일)	대통령 승인 要
서울중앙	1심 선고	3개월	'17.07.16.(일)	서울중앙 형사합의부 전속관할
서울고법	2심 선고	2개월	'17.09.16.(토)	
대법원	대법원 선고	2개월	'17.11.16.(목)	

* 憲§53①¹⁾에 民§161²⁾ 규정 無 → 토요일에 기간 만료[실제 일요일(2016.5.29.) 공포 사례 有]

1) 헌법 제53조

-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2)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위 각 기간은 국면에 따라 각각 다소 증감 가능

2) 지연 가능성

▣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소 5일 지연

- 재의결 후 공포기간 5일(憲53⑥) + α(재의결 소요시간 등)
 -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보임³⁾
- BH, 2016. 11. 20. 특검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 → 거부권 행사 가능성 배제 불가

2016. 11. 20. BH 정연국 대변인 브리핑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 대통령의 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20일 이상 지연 가능

- ①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거나, ② 野2당 후보자추천 후 특검 임명을 하지 않는 상황 배제 불가 ← 초법적 상황까지 감수하고 수사지연 시도 가능성 배제 불가
- 특검법에 이에 대비한 조항 無 → 특검법 개정 필요
 - ① 기간 내 미임명 시 국회의장이 임명 또는 ② 野2당이 순위를 정해 추천하고, 기간 내 미임명 시 1순위 후보자 임명 간주 등
 - 법률안 개정에 20일 이상 소요 예상
 - 개정안 발의 → 국회 의결 + 정부 이송 → 대통령, 법률안 공포기간(15일) 경과 직전 거부권 행사 → 국회 재의결 → 대통령, 법률안 공포기간(5일) → 국회의장 공포
 - 개정 과정에서 현 특검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 추가 가능성 有
- "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을 탄핵 사유로 추가 필요

3) 단축 가능성

▣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3일), 野2당의 특검 추천(5일)

3) 박○○, 최신 국회법 제3판, 박영사(2004) 563쪽



- 법정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15일)**

- 2016. 11. 22.(화) 국무회의 심의 후 조기공포 가능성 有(위 브리핑 내용 참조)

▣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 가능성 높음 → 30일 단축**

2. 재판기간

1) 3개월 + 2개월 + 2개월

특검법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과거 사례: 모두 재판기간이 특검법§10과 같음(3개월 + 2개월 + 2개월)

▣ **이○○ 게이트[21부(다), 11박○○, 28김○○, 280|○○]**

- 본체 사건: 2001고합995 등 24건 병합사건⁴⁾
 - 2001.9.22 ~ 2001.12.12 검찰 선행기소(2001고합995 등 4건)
 - 2002.1.29 ~ 2002.3.23 특검 후행기소(9건⁵⁾) 후 2001고합995에 병합
 - 2002.2.5 ~ 2002.8.24 검찰 추가기소(15건⁶⁾) 후 2001고합995에 병합
- 판결선고: 전 심급에서 모두 기간 미준수
 - 특검 기소사건과 검찰 기소사건 병합으로 인하여 특검법상 재판기간이 무의미

1심	2심	3심	환송후 2심	3심(재파기환송)	재환송후 2심	3심
'02.09.17	'03.02.17	'03.06.24	'03.11.14	'04.06.17	'05.08.23	'05.11.24

4) 가지 사건: 2001고합995에 병합 후 분리된 2002고합77,148(피고인 신○○), 2002고합151,295(피고인 이○○)

5) 그 중 2건은 분리 선고

6) 그 중 2건은 분리 선고



▣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최○○)[23부(가), 12김○○, 30이○○, 29허○○]

- 검찰 선행기소(2003고합1137 등) → 특검 후행기소 → 검찰 추가기소
 - 모든 사건이 2003고합1137에 병합
- 1심 판결선고는 기간 준수, 상소심은 미준수

사건	접수	기소	1심	2심	3심
2003고합1137	2003.11.03	검찰	2004.05.27	2004.08.17	2004.11.12
2003고합1437	2003.12.29	검찰			
2004고합323	2004.03.30	특검			
2004고합529	2004.05.08	검찰			

▣ 기타 사건

- 1심은 준수하는 경우가 많으나 상소심은 별로 없음(파란색 음영)

특검	접수	1심	2심	3심	환송후 2심
대북송금 ⁷⁾	'03.06.05	'03.09.26	'03.11.28	'04.03.26	
삼성비자금	'08.04.17	'08.07.16	'08.10.10	'09.05.29	'09.08.14
스폰서검사	'10.09.28	'11.01.28	'11.05.20	'11.11.10	
D-DOS (병합×)	'12.06.21	'12.08.30	'12.10.29	'12.12.27	
	'12.06.27	'12.09.26	'12.12.11	'13.02.28	
	'12.06.28	'12.10.16	'12.11.30	'13.04.06	
내곡동	'12.11.13	'13.02.13	'13.05.21	'13.09.27	

3) 재판기간 미준수 논리

- ▣ ① 훈시규정으로 해석 ← 과거 특검사건 재판 사례
- ▣ ② 특검 기소사건 외 병합사건 심리기간 필요

- “검찰 선행기소 → 특검 후행기소 → 검찰 추가기소” 및 병합심리 예상

7) 피고인 박○○ 부분은 제외 ← 분리되어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병합심리



- 특검 수사기간이 짧아 수사기간 종료 후 검찰의 관련사건 추가기소 가능성 높음
- 특히, 대통령 임기 조기 종료 시 검찰 또는 특검 추가기소 후 병합심리 가능성 有
- 특검 기소사건 외 병합사건 심리기간 필요 → 특검 기소사건만을 전제로 하는 특검법 상 재판기간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함

3.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위헌제청신청 시

1)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등 7일로 단축

	상소기간	기록송부기간	상소이유서 제출	답변서 제출
특검법 §10②	7일	7일	7일	7일
형사소송법	7일	14일	20일	10일

특검법 제10조(재판기간 등)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기록송부), 제361조의3제1항(항소이유서 제출)·제3항(답변서 제출), 제377조(기록송부) 및 제379조제1항(상고이유서 제출)·제4항(답변서 제출)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2) 문제 상황

- 피고인이 상고이유서를 7일을 초과하여 제출하거나, 1차로 7일 내에 제출하고 2차로 7일을 초과하여 제출하면서 특검법 §10② 위헌법률제청 신청

3) 상정 가능한 방안

■ ① 위헌제청

- 火-①: 위헌제청 후 재판 중단(헌재법 §42①본문)
- 火-②: 위헌제청 후 종국판결 외 재판 진행(헌재법 §42①단서)
 - 특검법에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헌재법 §42①단서의 긴급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 소송지연 최소화
 - 헌재 심리 경과를 보며 7일을 초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에 대한 심리 여부 적절히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2] '제청신청 기각 후 재판 진행' 또는 '재판 진행 후 선고 시 제청신청 기각'

- 위헌이 아니라고 볼 경우 위와 같이 절차 진행
- 위헌이라고 보더라도,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상소이유서를 제출받고 재판을 진행하여, 상소이유를 판단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제청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로 보임**
 - **[가능설]** 상소이유서가 7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고 7일을 초과하여 접수되는 경우는 별론, 7일 이내에 1차 상소이유서가 제출되고 7일을 초과하여 추가 상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합헌적 법률해석에 의하여 추가 상소이유서의 상소이유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제청신청 기각 가능
 - **[불가능설]** 법률의 내용이 다양한 해석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면 합헌적 법률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명백한 내용에 대한 위헌결정 여부만 문제됨 → 위헌 여부와 별개로 특검법 §10②는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상고이유가 7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을 의미함이 명백하고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없음
- 제청신청을 기각하여 적법하게 주장된 상소이유로는 판단하지 않는 경우에도, 헌법소원(헌재법 §68②)에 대비하여 刑訴 §364② 또는 §384에 의하여 직권판단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판단함이 바람직
 - 직권판단을 통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사라질 것으로 보임
 -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주장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리 및 판단을 하면, 재판의 전제성이 사라진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 없다고 보이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②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제384조(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4. 검찰과 특별검사와의 관계

▣ 문제 상황

- 검찰과의 관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음

특검법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검토 → ① 특검 수사대상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권한은 원칙적으로 특검에 있음, ② 특검의 수사 등 권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또는 명시적, 묵시적 협조 요청 범위 내에서 검찰의 수사 등 가능, ③ 특검 수사대상 사건에 관한 수사 등에 관하여 특검과 검찰의 소송행위 등이 충돌할 경우, 특검의 소송행위 등이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함

- 특별검사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로서 권력형 부정사건 및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터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공소유지가 되게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헌법재판소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결정)

- 특검의 직무범위는 특검 수사대상 사건에 한정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검찰에 자료제출, 지원 등 요청권이 있음

■ 구체적인 쟁점 관련

- 특검법 시행 후 검찰의 수사 가능 여부
 - 특검의 수사 등 권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또는 명시적, 묵시적 협조 요청 범위 내에서 검찰의 수사 등 가능
 - 다만, 특검의 취지상 검찰의 수사 등은 긴급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
- 특검법 시행 전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
 - 특검 수사대상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권한은 원칙적으로 특검에 있으므로, 특검법 시행 전 기소 사건의 경우에도 그 공소유지 권한은 특검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
 - 특검의 공소유지 권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또는 명시적, 묵시적 협조 요청 범위 내에서 검찰의 공소유지 병행 가능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모두 공소유지에 관여함)
 - 다만, 공소장 변경 등 공소유지 관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특검과 검찰의 의견 내지 소송행위가 충돌할 경우에는, 특검의 의견 내지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함
- 검찰 선행기소와 특검 후행기소 - 이중기소 문제 등
 -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과 특검 모두 일방 당사자인 '검사'에 해당할 뿐임
 - 재단법인 미르 등에 대한 기업체 출연 관련,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기소하였는데, 특검에서 제3자뇌물수수로 기소한 경우 → 특검 수사대상 사건에 관한 공소유지 권한은 특검에 있으므로, 이중기소가 아니라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



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함⁸⁾

- 火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죄명)의 추가인 경우

-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인정됨
- ❖ 뇌물수수과 공갈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는 점(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 15842 판결 등) 등에 비추어, 추가 가능
- ❖ 특검과 검찰의 소송행위가 충돌하는 경우도 아님

- 上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죄명)의 변경인 경우

-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인정됨
- ❖ 특검과 검찰의 소송행위가 충돌하는 경우임 → 특검의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은 공소장 변경 허가 가능

5. 압수수색 관련

■ 문제 상황

- 형소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배제 규정 없음

형소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 ②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 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된 경우),

한편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검사로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기소의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고 그 죄명과 적용법조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충실한 온당한 처리이다)



▣ 군사상/공무상 비밀과 압수수색

- 책임자의 승낙은 영장발부 조건이 아니라 영장집행 조건임
 - 청와대 전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공무상 비밀의 경우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수색'은 가능함
- 책임자는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승낙하여야 함
 - 책임자의 승낙 거부에도 불구하고 영장집행한 경우 → 준항고 또는 본안 절차에서 책임자의 승낙 거부 정당인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압수취소 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

6. 재판부 배당 관련

▣ 검찰 1차 기소 - 2016. 11. 20. 피고인 최○○, 안○○, 정○○

- 사건배당 확정 전 재정합의결정 통해 합의부에서 처리함이 적절
- 전담사건 아닌 일반사건이므로 12개 재판부(21부 ~ 32부) 중 하나에 배당
 - 피고인 최○○, 안○○은 관련사건(형소법 11조⁹⁾), 피고인 정○○은 관련사건(형소법 11조) 아니지만 병합기소된 상태임 → 별도의 병합결정 不要 다만 병합심리 필요성 없으면 분리결정 可能(형소법 300조¹⁰⁾)
 - 사물관할은 모두 단독판사 관할사건 → 재정합의결정 필요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사건배당 확정 전의 재정합의·재정단독 사건의 처리)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심 단독사건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민사소송사건, 형사소송사건,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이하 “재정합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건배당에 앞서 기록회부서(전산양식 A1100)를 첨부하여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하여 이를 합의부에서

9) 1. 1인이 범한 수죄 → 경합범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 형법총칙상 공범, 필요적 공범, 합동범

3.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 동시범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10)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심판할 사건(이하 “재정합의사건“이라 한다)으로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1.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2.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3.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4.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5.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6.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 특검 후행 기소

-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전속관할 (특검법 제18조) → 재정합의결정 不要
- 검찰 1차 기소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로의 배당 여부 → 관련사건, 전담사건 등 해당 여부 또는 관계 재판장들과의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특검 수사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소법상 관련사건에 해당하지는 아니함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8조(배당의 방법)

② 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재판부의 배당순서에 따라 사건 1건씩을 각 재판부에 배당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라 배정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전문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은 전문사건에 대하여는 각 전담재판부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2. 재판부 사이의 사무분담비율이 다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사건을 배정한다.

3.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③ 업무부담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제2항에 의한 배당방법에 따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이와 다른 방법으로 배정할 수 있다. 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 최○○ 등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등(관련사건이면서 부패범죄) 추가 기소된 경우
- 화재 : 선행 사건 재판부에 관련사건으로 배당
 - 사건배당예규 제18조 제2항 제3호
 - 일반적인 사건배당 방식임



- 상안 : 부패범죄 전담재판부에 배당 후, 선행 사건 재배당 또는 별개 진행
 - ❖ 사건배당예규 제18조 제2항 제1호
 - ❖ “부패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제5항은 ‘부패범죄 사건과 경합된 사건 및 관련사건으로 공동으로 심리하여야 할 사건도 모두 부패범죄 전담재판부 또는 부패범죄 전담 단독판사가 심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09. 8. 28. 삭제되었음
 - ❖ 사건배당예규 제26조(재배당), 14조(배당확정의 효력)¹¹⁾
 - ❖ 특검 기소 예상시기(2017. 2. 하순 또는 3. 중순)에 비추어, 선행 사건의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을 것인바, 선행 사건 재배당 또는 별개 진행 모두 적절하지 아니함

11) 3. 형소법 제11조(관련사건)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사자나 검사가 병합심리 또는 이부를 구하여 온 때
4.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10.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 요구를 한 때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 사건개요

■ 1심 : 대전지법 2011. 12. 19. 선고 2011가소59606

- 당사자 : 원고 최○○(변호사 없음), 피고 대한민국
- 청구취지 :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 주문 : 원고 청구 기각

■ 항소심 : 대전지법 2012. 5. 3. 선고 2012나974

- 주문 :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 인정

-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8. 6.경 하숙집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로 연행되어, 20여일간 법관 영장없이 구금됨
- 가혹행위, 형사기소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은 아님

- 판시이유

-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발동행위 ⇨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불법행위

· 임의동행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통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서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함 ⇨ 이 사건의 임의동행은 불법체포이고, 20여일 불법구금

- 긴급조치 1호는 해제된 상태이고, 당시의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여 위헌 무효임
-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대통령이 당해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없음(대법원 1997. 6. 13. 선

고 96다56115 판결) ⇨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헌법상 문언에 반하므로,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대통령에게 고의·과실이 인정됨

-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의 강제연행 및 불법구금 ⇨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불법 행위
 - 중앙정보부는 단순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하여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강제연행 및 불법구금을 한 소속 공무원들에게 고의·과실이 인정됨
-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주장 ⇨ 권리남용

2.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 원고는 상고하지 않고, 피고 대한민국만 상고함

■ 주문 : 항소심 파기, 환송

■ 판결요지

-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발동행위 ⇨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불법행위 성립 안 함

-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이나,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님
- 소위 '거창사건' 판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¹⁾ 괄호 안 인용

1) ① 희생자 사망 관련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법률안을 의결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헌법 제49조, 제53조, 제54조 등 참조)와 집행기관으로서 국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법률안을 공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 및 행정부(헌법 제53조, 제54조, 제89조 등 참조)가 국민 전체의 여론과 국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

②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국회에 구체적인 입법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족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작위에 의한 불법 행위 성립하지 않음

●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의 강제연행 및 불법구금 ⇨ 불법행위,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 원고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 아니어서 재심절차에 의하여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체포 구금 시부터 소 제기 시까지 30년 이상 경과함
-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검토

●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최초 판시

3. 참조 판례

■ 긴급조치 위헌·무효 선언

- 긴급조치 1호 ⇨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판결
- 긴급조치 4호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판결
- 긴급조치 9호 ⇨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결정

-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헌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 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 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 긴급조치 발령행위 및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 한정적 긍정

-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판결

-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 체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법치주의의 원칙상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조치로서 형벌법규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긴급조치 제1호에 규정된 형벌법규에 대하여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가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 직접적인 선례 없음

체크리스트 (2018. 7. 31.)

- [처장님] 처장님 신임 법관 특강 말씀 자료
- [차장님] 판사회의 순기능
- [차장님] 차○○ 판사 대응 방안
- [양형실장님]
- [재무담당관] 울산법원 미술품 기증받는 절차와 관련하여 기부금품 관련 위원회 설치 및 규칙 제정 필요성
- [차장님] 코트넷 공지문
- [차장님] 사법행정위원회 구체적 실행 계획
 - 실무지원단 구성
 - 사법행정위원회 코트넷 전용 소통 공간 설립 ⇨ 전정국에 협조 요청
- [실장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 [처장님] [차장님]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개편 방향
- [윤○○ 부장님 지시사항] 법관연수지원팀 활동 경과 정리
- [실장님] 법률안 검토의견 회신
- [차장님] 소통의 창 수신인 - 기획조정실장님 보고
- [실장님] 정책연구용역 연구과제 선정 및 예산 활용과 사법정책연구원의 관계에 대한 차장님 말씀의 뜻을 여쭙어 보고 기초실장님께 보고

[2. 22. 이후]

- [차장님] 법관 정년퇴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사법지원총괄] 디지털 포렌식 과정
- [차장님] 부정적 언론 보도 대응 방안 - 구체적 실행 계획 작성
- [부장님]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 소지 사무관 재판연구관

근무 방안

○ 정책연구용역

○ 2016년도 주요 행사 일정표(책받침 형태) 제작 완성 보고

○ 김○○ 부장님 -> 발표비 50만 원 지급

○ 정책연구용역

- 교수와 법관의 공동 정책연구용역 수행 가부
- 활용 현황 파악

(151121) 차장님 지시사항
법원 커뮤니티 현황
일부 커뮤니티의
폐쇄형 커뮤니티의 발전적 해체 ⇨ 민법상 사단법인화 ⇨ 법원행정처를 감독 관청
행정판례연구회와 동일하게
재정적 지원은 각종 연구용역으로
법원 커뮤니티 전환
형사법연구회 - 형사수석부장
사법연수원LEC
검찰의 경우, 2007년도 형사소송법학회
법률 개정 국면
*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재판 실무에 접목하여 활용했는지 여부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총서 ⇨ 유용한 자료들이 많음
- 해당 실국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책자발간 (대검찰청 ⇨ 신경향)

○ [처장님] 심리상담프로그램 관련 이○○ 국장 이메일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권○○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정책연구용역 활용 현황 파악

○ 기획총괄심의관님 ⇨ 시험출제위원

- 각종 시험 출제위원 (이○○ 부장님)
- 기획교수실에 확인하여 2015년도 시험 출제에 참여하신 강의교수님들 명단 확인
- 강의를 나갈 수 있는 교수님들의 여력 확인

○ 법관연수 관련 아이디어 보고

-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과 법관연수 연계 방안
- 법원행정처 기본계획, 법원장회의 자료 분석 ⇨ 아이템 발굴

◆ 주요 정책 과제
- 법정언행 개선

◆ 독립 강좌 개설 여부
- 필요/ 불필요
- 독립강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법관연수 반영 방법

- ◆ 강좌를 추가할 연수과정
 - 신입법관연수/ 경력별연수/ 재판장연수/ 재판실무연수/ 전문분야연수
 - 온라인연수
- ◆ 법관연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책자, 연구 성과, 각종 자료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 ◆ 추천강사

○ 법관연수 건의사항 취합

- 그동안 보고서에서 “법관연수”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던 내용들

○ 공익법무관 활용방안

- 사법부에 공익근무요원은 배치하면서, 공익법무관은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공익법무관과 점심
- 공익법무관을 행정심판 검토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는 방안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정보공개신청(이의신청) 등 검토에 활용하는 방안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익법무관이 파견되어 행정심판 검토 업무를 하고 있는지
- 국가소송업무, 법률구조업무, 자문업무로 나누어야 함
- 국가소송업무 및 자문 업무의 경우 큰 문제 없음 -> 행정심판, 정보공개신청이의 등으로 확대
- 법률구조업무 -> 시범적으로, 대규모 지방법원 본원에 공익법무관을 법률상담관으로 1명씩 파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개정해야 함

○ 정책연구용역 [처장님 지시사항]

- 수의계약 체결 가능 계약
- 교수들의 경우 실무와 유리된 현상
- 법관 커뮤니티나 사법정책연구원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151024) 김○○ 부장님, 김○○ 판사님께 질문

-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법제도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보면, 재판중계 제도 등에 관하여 외국의 사례를 방대하게 조사하였는데,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당하였고, 어떻게 부탁하여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질문
- 법원행정처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들(홍보심의관실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현황, 공개변론이 20분 지연 송출되고 있다는 점 등)은 각 실국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였는지 질문

○ 처장님 말씀 [법원 友軍 만들기 전략]

- 아래 사람들에 대한 명단 확보 후 사후 관리 방안(연하장 보내기, 사법논집 보내기, 법원소식지 보내기 등) 마련할 것
 - 조사위원(국제실, 정책실, 지원실)
 - 비법관재판연구관
 -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위원
 - 외교부 외무관 등
- 위원회, 상임조정위원, 국선전담

○ 차장님 지시사항 - 1소위 중요 법률안 보고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이○○ 판사님께 질문

- 이행권고결정 권한을 사법보좌관에게 이양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16402)을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하도록 임내현 의원을 접촉, 설득한 구체적 과정
- 전해철 의원이 2015. 7. 10.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16056): 당사자의 소송진술방식 개선
- 의원입법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차장님] 법정언행컨설팅 개선방안 검토할 것

- 구체적으로는, 강의형 연수의 개선방안
- 차장님도 인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강의형 연수를 수강한 사실이 있음

○ [부당소송] 윤○○ 부장님

○ [실장님] 부당소송, 1인 시위 활성화 방안, 매뉴얼 업데이트, 홍보 ⇨ 예산 사용 관련 점검 필요

○ [실장님]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건수 없으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총무과에 알리는 방안
- 매년 공문 시행

○ [실장님]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교수님 정책연구용역 커뮤니티 가입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열람 방법

○ [실장님] 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 방안 ⇨ 연수법관 부과과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

○ [처장님] 서○○ 같은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처장님] 재항고사건, 행정심판사건, 진정/민원사건
- [실장님] 민원서류 접수 가능한지 여부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연구관실과 상의 ⇨ 소권 남용 논리 등
- 예)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한 대법원 2014두36358 판결 등
- 해외연수법관 수시과제 부과

- 정책연구용역 발주
- 사법정책연구용역

- [실장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관련 피해 사례 ⇨ 대형 로펌 확인
 - 이○○, 김○○○, 박○○에게 부탁
- [실장님] 김○○ 부장님 요청사항 - 의무이행소송 관련 스토리화
- [실장님] 행정심판위원회 간소화 방안
- [실장님 말씀] 법관연수 관련 Assessment 활용방안 적극 검토
 - 법원장 보임에 활용 가능함
- [실장님 말씀] 전국 재판부로부터 문제 있는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
- 공공데이터 관련 캠프 현황 파악 보고
- 석사과정 위탁 교육 개선 방안 마련
 - 법관 : 일반직 비율을 50:50
 - 법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석사과정 적극 발굴
 - 법관들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와 같이 근무평정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
 - 지원자가 적거나, 일반직 위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예산 불용 처리 ⇨ 예산 항목이 수 용비인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실장님 말씀] 석사 과정 후기 선발 여부도 검토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 검토
 - 불필요한 회의 불참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2018. 7. 31.)

- 주간업무계획 결재 상신
- 판사회의 대응 논리 ⇨ 차장님 보고
- 대법원장님 업무보고 책자 중 언론 홍보 아이템 발굴
 - 기초실 입장
- 책장 정리, 책상 정리, 하드디스크 정리
- 사법발전계획 작성
 - 임○○ 부장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문의
- 법원문화연구반
 - 법원문화연구반 과제 추출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배정
 - 전문분야연구회 (3. 31. ~ 4. 10.)
 - 예산배정 연기 여부
 -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숙지

- **박○○ 판사님**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통계 양식 파일 문의 (4. 1.자 이메일)
- **3/24 임○○ 부장님 (3/31)**
 - 사법발전계획 작성 (기한 3/31)
- **차장님 지시사항**
 -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체계
- **[양형실장님] 국제인권법연구회 책자 발간 지원 방안**
 - 예산 지원 방법 구체적으로 검토 ⇨ 조○○ 판사에게 인계
- **[윤○○ 부장님 지시사항] 법관연수지원팀 활동 경과 정리**
 - 매뉴얼화
- **[실장님] 법률안 검토의견 회신**
 -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차장님] 법관 정년퇴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홍보 관련 구상**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나○○ 부탁 - 2015, 2016 전출 심의관**

체크리스트 (2018. 7. 31.)

- 법의 날 기념식 영상 관련 보고
- 판사회의 대응 논리 ⇨ 차장님 보고
- 책장 정리, 책상 정리, 하드디스크 정리
- 사법발전계획 작성
 - 임○○ 부장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문의
- 법원문화연구반
 - 법원문화연구반 과제 추출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배정
 - 전문분야연구회 (3. 31. ~ 4. 10.)
 - 예산배정 연기 여부
 -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숙지

- **박○○ 판사님**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통계 양식 파일 문의 (4. 1.자 이메일)
- **3/24 임○○ 부장님 (3/31)**
 - 사법발전계획 작성 (기한 3/31)
- **차장님 지시사항**
 -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체계
- **[양형실장님] 국제인권법연구회 책자 발간 지원 방안**
 - 예산 지원 방법 구체적으로 검토 ⇨ 조○○ 판사에게 인계
- **[윤○○ 부장님 지시사항] 법관연수지원팀 활동 경과 정리**
 - 매뉴얼화
- **[실장님] 법률안 검토의견 회신**
 -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차장님] 법관 정년퇴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홍보 관련 구상**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나○○ 부탁 - 2015, 2016 전출 심의관**

체크리스트 (2018. 7. 31.)

○ **처장님**

- 사법발전계획
-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 (국회 속기록)
- 김진태 의원의 국회 발언 내용 ➡ 김진태 의원에 대한 동향 분석 필요
 - 가) 보좌진 내역
 - 나) 친한 사람들, 컨택 포인트
 - 다) 법원에 계속된 사건 내용
- [사건] '민변'에 대한 보고서 작성 필요

○ **실장님 보고 사항**

- 4. 14. 저녁 입법조사관과 심의관들 사이의 저녁 회식
- 대법관 워크숍 답사 예정(4. 18.)
- 비발디파크 퍼블릭 골프장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20대 총선 당선자 보고**

- 4. 14.(목) 오전 8시 보고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반응과 향후 전망**

- 4. 14.(목) 오전 8시 보고

○ **서울동부지법 업무보고 홍보아이템 추출**

- 4. 14.(목) 오전 송부

○ **법원문화연구반 과제 추출**

- 4. 14.(목) 오전 검토
- 법원문화연구반 과제 추출

○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배정**

- 4. 14.(목) 오전 검토
- 전문분야연구회 (3. 31. ~ 4. 10.)
- 예산배정 연기 여부
-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숙지

○ **법의 날 준비 필요 사항 점검**

- 대법원장님 축사 파일을 법무부에 그대로 전달했는지, 아니면 우리 측에서 직접 말씀판을 가지고 갔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례 확인

- 기초실장님, 비서실장님께 보고
- 전체 행사계획 확인, 행사 동선 확인

○ **나○○ 부탁 - 2015, 2016 전출 심의관**

- 4. 14.(목) 오전 검토
- 박○○ 대법관님 주최 만찬 준비 위해 필요

○ **각급 법원 업무보고 건의사항 취합 정리**

- [1차 취합본] 4. 14.(목) 오후 보고
- [2차 취합본] 4. 18.(월) 오전 8시 보고
- [최종본] 4. 19.(화) 보고

○ **판사회의 대응 논리**

- 4. 15.(금) 오전 8시 보고

○ **홍보TF 발표문 작성**

- 4. 23.(토)부터 시작
- 4. 23.~24. 초고 작성
- 4. 25.~26. 예산, 조직실에 조사 의뢰
- 4. 27.~28. 수정본 작성
- 4. 29. 실장님께 보고, 완성본 송부

=====

○ **책장 정리, 책상 정리, 하드디스크 정리**

- 하드디스크 구입

○ **사법발전계획 작성**

- 임○○ 부장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문의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의견**

-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의견 개선 방안 검토
- 발렛파크 서비스 문제와 함께 검토

○ **주요 법률**

- 상고심 개선 관련 민사소송법?

- 상고법원 관련 법원조직법 등
- 정재청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 상고심 개선 관련 민사소송법
- 양형조사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등

○ **박○○ 판사님**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통계 양식 파일 문의 (4. 1.자 이메일)

○ **3/24 임○○ 부장님 (3/31)**

- 사법발전계획 작성 (기한 3/31)

○ **차장님 지시사항**

-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체계

○ **[양형실장님] 국제인권법연구회 책자 발간 지원 방안**

- 예산 지원 방법 구체적으로 검토 ⇨ 조○○ 판사에게 인계

○ **[윤○○ 부장님 지시사항] 법관연수지원팀 활동 경과 정리**

- 매뉴얼화

○ **법률안 검토의견 회신**

-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형사소송법(김진태 의원) 제출 법률안

○ **[차장님] 법관 정년퇴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홍보 관련 구상**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대법원장님 해외순방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자료집 작성**

○ **김○○ 국회 서기관과 저녁 식사**

- 서래마을 정도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
- 국회 법사위가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는지?
- 국회 본회의 일정은 어떻게 확정되는지?
- 국회의 전반에 대한 상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등등
- 국회선진화법에 대하여도 공부 ⇨ 현재 결정

○ **개헌 논의 관련**

-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구성 상황 점검
-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활동 상황 점검
- 헌법재판소의 헌재법 개정의견서 제출 관련 진행상황 점검

○ **국회 요구자료 목록 점검**

-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 배경은 무엇인지 항상 확인해야 함

체크리스트 (2018. 7. 31.)

- 입법추진계획 취합 보고(7. 6.) ⇨ 7. 7. 부장회의 ⇨ 처장님 보고
- 전관비리 근절 토론회 토론자 추천 여부
- 광복절 참석자
- 대한변협
- 예상질의답변(현안)
- 결산전체회의 참석자 확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자 확정
- 결산전체회의 질의 내용 정리 처장님 보고
- **[처장님]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 (국회 속기록)**
- **[처장님] 김진태 의원의 국회 발언 내용**
 - 김진태 의원에 대한 동향 분석 필요
- **[실장님] 개헌 가능의식 2/3 도달 여부 점검**
- **[처장님] 각급 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더민주당 공약 관련 확인**
- **[차장님] 사법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종료 후 반응과 향후 전망
- **각급 법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대법원장님 업무보고,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사법연수원] 경력별연수 불참 사유서 송부**
- **[사법정책연구원] 성희룡 내규 대법원장님 승인 관련 처리**
- **법원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당선 축하 만찬 여부**
- **[차장님] 사무분담 기준 변경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
- **법원문화연구반 과제 추출**

=====

○ [7. 8.] 국제인권법연구회 전관예우토론회 논의 결과 확인

대구지방법원 김○○ 판사입니다.

어제까지는 비가 왔다갔다 했는데 오늘은 대구의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날씨네요.

2016. 7. 8.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중앙법원 20층에서 전관예우 관련 토론회가 열립니다. 전관예우 문제는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면서도 우리 판사들의 현재,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이런 저런 대책들을 내 놓고 있습니다만 그와 별도로 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등 여러 관점에서 토론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차○○ 판사님이 간략한 발제를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열치열이라고 합니다. 전관예우 관련 토론의 뜨거움으로 여름날의 더위를 날려버리시는 건 어떨까요?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김○○ 올림

○ 등기국장님 지시사항

- [7. 1.자 이메일] 존경하는 김 심의관님, 어제 현안보고 때 법원의 감사, 감찰 활동 필요성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향후 예산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생각됩니다. 어제 속기록이 나오면 실무관 혹은 계장님을 통하여 제게 1부 주십시오. 이○○ 올림

○ 법사위원별 관심 사항 파악 ⇨ 위원별로 2~3쪽으로 정리

- 프로필, 컨택포인트, 친분 있는 법관, 가족관계, 교우관계
- 언론보도 분석, 운영 블로그 등 분석
- 법안발의 내역, 자료제출 요구 내역
- 보좌관, 비서관에게 문의

- **책장 정리, 책상 정리, 하드디스크 정리**
 - 하드디스크 구입
- **사법발전계획 작성**
 - 임○○ 부장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문의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의전**
 -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의전 개선 방안 검토
 - 발렛파킹 서비스 문제와 함께 검토
- **주요 법률**
 - 상고심 개선 관련 민사소송법?
 - 상고법원 관련 법원조직법 등
 - 정재청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 상고심 개선 관련 민사소송법
 - 양형조사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등
- **박○○ 판사님**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통계 양식 파일 문의 (4. 1.자 이메일)
- **차장님 지시사항**
 -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체계
- **[양형실장님] 국제인권법연구회 책자 발간 지원 방안**
 - 예산 지원 방법 구체적으로 검토 ⇨ 조○○ 판사에게 인계
- **[윤○○ 부장님 지시사항] 법관연수지원팀 활동 경과 정리**
 - 매뉴얼화
- **[차장님] 법관 정년퇴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홍보 관련 구상**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대법원장님 해외순방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자료집 작성**

○ **김○○ 국회 서기관과 점심 식사**

- 서래마을 정도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
- 국회 법사위가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는지?
- 국회 본회의 일정은 어떻게 확정되는지?
- 국회의 전반에 대한 상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등등
- 국회선진화법에 대하여도 공부 ⇨ 현재 결정

○ **개헌 논의 관련**

-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구성 상황 점검
-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활동 상황 점검
- 헌법재판소의 헌재법 개정의견서 제출 관련 진행상황 점검

○ **국회 요구자료 목록 점검**

-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 배경은 무엇인지 항상 확인해야 함

체크리스트 (2018. 7. 31.)

- 사무관 평정
- 국회 법사위 편람
- [차장님] 20대 국회 입법 추진 전략
 - 법무부 추진 법률 확인
- [차장님] 사법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종료 후 반응과 향후 전망
- [사법정책실장님] 홍보 TF 보고서 보완
 - 가능한 대우 등 확인
- 처장님
 -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 (국회 속기록)
 - 김진태 의원의 국회 발언 내용 → 김진태 의원에 대한 동향 분석 필요
 - 각급 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공약 관련 확인
- [실장님] 정○○ 사건 관련 제도 개선책 추진 절차 구체화
 - 의견 취합 결과 반영
- [차장님] 사무분담 기준 변경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
- [처장님] 만화 기증 받는 문제
-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지원
 - 박○○ 판사 보고서와 함께 정리,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숙지
 - 예산배정 연기 여부
- 김○○ 부장님
- 각급 법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대법원장님 업무보고,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법원문화연구반 과제 추출
- 나○○ 부탁 - 2015, 2016 전출 심의관
 - 박○○ 대법관님 주최 만찬 준비 위해 필요
- [차장님] 판사회의 대응 논리

=====

- **책장 정리, 책상 정리, 하드디스크 정리**

- 하드디스크 구입

- **사법발전계획 작성**

- 임○○ 부장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문의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의견**

-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의견 개선 방안 검토
- 발렛파크 서비스 문제와 함께 검토

- **주요 법률**

- 상고심 개선 관련 민사소송법?
- 상고법원 관련 법원조직법 등
- 정재청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 상고심 개선 관련 민사소송법
- 양형조사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등

- **박○○ 판사님**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통계 양식 파일 문의 (4. 1.자 이메일)

- **차장님 지시사항**

-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체계

- **[양형실장님] 국제인권법연구회 책자 발간 지원 방안**

- 예산 지원 방법 구체적으로 검토 ⇨ 조○○ 판사에게 인계

- **[윤○○ 부장님 지시사항] 법관연수지원팀 활동 경과 정리**

- 매뉴얼화

- **[차장님] 법관 정년퇴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홍보 관련 구상**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대법원장님 해외순방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자료집 작성**
- **김○○ 국회 서기관과 점심 식사**
 - 서래마을 정도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
 - 국회 법사위가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는지?
 - 국회 본회의 일정은 어떻게 확정되는지?
 - 국회의 전반에 대한 상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등등
 - 국회선진화법에 대하여도 공부 ⇨ 현재 결정
- **개헌 논의 관련**
 -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구성 상황 점검
 -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활동 상황 점검
 - 헌법재판소의 헌재법 개정의견서 제출 관련 진행상황 점검
- **국회 요구자료 목록 점검**
 -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 배경은 무엇인지 항상 확인해야 함

체크리스트 (2018. 7. 31.)

○ [차장님] 사법행정위원회

- 실무지원단 구성
- 사법행정위원회 코트넷 전용 소통 공간 설립 ⇨ 전정국에 협조 요청

○ 지원장 연수 - 리더십 강좌

○ [차장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결과 보고서 활용 현황 파악

- ▣ 연구주제 관련 정책 추진 경과 및 현황
- 연구 주제 관련 정책 결정 사항 및 연구보고서 내역 등 정리
- 연구 단계에서 담당 심의관이 기존 자료를

○ [차장님] 법관 정년퇴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처장님] [차장님]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개편 방향

○ [차장님] 부정적 언론 보도 대응 방안 - 구체적 실행 계획 작성

○ 보안컨설팅 TF

○ [부장님]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 소지 사무관 재판연구관 근무 방안

○ 법정언행컨설팅 개선방안, 만족도 설문 조사

- 설문 문항 작성 (1안) 전산실에 의뢰, (2안) 기획법관에게 의뢰

○ 소통의 창 수신인 - 기획조정실장님 보고

○ 초임지법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장님 격려 오찬에 대한 개괄적인 구상 보고

- 차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비서실장님께 구상 보고 드린 후, 구상에 대한 개괄적인 허가를 받으면 구체적인 계획 작성하여 상신
- 인사실에 개략적인 인원 알려 달라고 부탁 (2016년, 2017년)

○ 정책연구용역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 사법정책연구원 기본과제 신청

○ 2016년도 주요 행사 일정표(책받침 형태) 제작 완성 보고

○ 법률안 의견 회신

○ **법원행정처 발간 책자 목록 정리**

- 1. 4.(월) 법관연수지원팀

○ **법관연수에 반영해야 할 사법행정의 주요 과제 추출**

- 1. 4.(월) 법관연수지원팀

○ 김○○ 부장님 -> 발표비 50만 원 지급

○ **정책연구용역**

- 교수와 법관의 공동 정책연구용역 수행 가부
- 활용 현황 파악

(151121) 차장님 지시사항
법원 커뮤니티 현황
일부 커뮤니티의
폐쇄형 커뮤니티의 발전적 해체 ⇨ 민법상 사단법인화 ⇨ 법원행정처를 감독 관청
행정판례연구회와 동일하게
재정적 지원은 각종 연구용역으로
법원 커뮤니티 전환
형사법연구회 - 형사수석부장
사법연수원LEC
검찰의 경우, 2007년도 형사소송법학회
법률 개정 국면
*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재판 실무에 접목하여 활용했는지 여부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총서 ⇨ 유용한 자료들이 많음
- 해당 실국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책자발간 (대검찰청 ⇨ 신경향)

○ [처장님] 심리상담프로그램 관련 이○○ 국장 이메일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권○○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정책연구용역 활용 현황 파악**

○ **법관연수 운영협의회 논의 결과 정리 및 보고**

○ **법원 보안 TF 일정 확인**

○ **기획총괄심의관님 ⇨ 시험출제위원**

- 각종 시험 출제위원 (이○○ 부장님)
- 기획교수실에 확인하여 2015년도 시험 출제에 참여하신 강의교수님들 명단 확인
- 강의를 나갈 수 있는 교수님들의 역량 확인

○ **법관연수 관련 아이디어 보고**

-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과 법관연수 연계 방안
- 법원행정처 기본계획, 법원장회의 자료 분석 ⇨ 아이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언행 개선 ◆ 독립 강좌 개설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불필요 - 독립강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법관연수 반영 방법 ◆ 강좌를 추가할 연수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법관연수/ 경력별연수/ 재판장연수/ 재판실무연수/ 전문분야연수 - 온라인연수 ◆ 법관연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책자, 연구 성과, 각종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 추천강사
--

○ 법관연수 건의사항 취합

- 그동안 보고서에서 “법관연수”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던 내용들

○ 김○○ 실무관에게 떠나기 전에 업무인수인계 매뉴얼 만들고 떠나라고 지시

- ⇨ 기획2심의관에게 결재 받을 것

○ 공익법무관 활용방안

- 사법부에 공익근무요원은 배치하면서, 공익법무관은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공익법무관과 점심
- 공익법무관을 행정심판 검토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는 방안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정보공개신청(이의신청) 등 검토에 활용하는 방안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익법무관이 파견되어 행정심판 검토 업무를 하고 있는지
- 국가소송업무, 법률구조업무, 자문업무로 나누어야 함
- 국가소송업무 및 자문 업무의 경우 큰 문제 없음 -> 행정심판, 정보공개신청이의 등으로 확대
- 법률구조업무 -> 시범적으로, 대규모 지방법원 본원에 공익법무관을 법률상담관으로 1명씩 파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개정해야 함

○ 정책연구용역 [처장님 지시사항]

- 수의계약 체결 가능 계약
- 교수들의 경우 실무와 유리된 현상

- 법관 커뮤니티나 사법정책연구원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151024) 김○○ 부장님, 김○○ 판사님께 질문

-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법제도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보면, 재판중계 제도 등에 관하여 외국의 사례를 방대하게 조사하였는데,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당하였고, 어떻게 부탁하여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질문
- 법원행정처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들(홍보심의관실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현황, 공개변론이 20분 지연 송출되고 있다는 점 등)은 각 실국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였는지 질문

=====

○ 차장님 말씀 [법원 友軍 만들기 전략]

- ▣ 아래 사람들에 대한 명단 확보 후 사후 관리 방안(연하장 보내기, 사법논집 보내기, 법원소식지 보내기 등) 마련할 것
 - 조사위원(국제실, 정책실, 지원실)
 - 비법관재판연구관
 -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위원
 - 외교부 외무관 등
- ▣ 위원회, 상임조정위원, 국선전담

○ 차장님 지시사항 - 1소위 중요 법률안 보고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이○○ 판사님께 질문

- 이행권고결정 권한을 사법보좌관에게 이양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16402)을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하도록 임내현 의원을 접촉, 설득한 구체적 과정
- 전해철 의원이 2015. 7. 10.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16056): 당사자의 소송진술방식 개선
- 의원입법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차장님] 법정언행컨설팅 개선방안 검토할 것

- 구체적으로는, 강의형 연수의 개선방안
- 차장님도 인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강의형 연수를 수강한 사실이 있음

○ [부당소송] 윤○○ 부장님

○ 법정언행 모범 동영상 온라인 게재

○ [등기국장님] 공탁지원금 관련 대응 방안 → 사법발전재단 현황 면밀히 파악할 것

- 7/21 다시 지시

○ [등기국장님] 공탁금기금운용위원회 규칙 제정

○ [차장님] 행정심판규칙 정비

○ [실장님] 부당소송, 1인 시위 활성화 방안, 매뉴얼 업데이트, 홍보 ⇨ 예산 사용 관련 점검

필요

- [실장님]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건수 없으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총무과에 알리는 방안
 - 매년 공문 시행
- [실장님]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교수님 정책연구용역 커뮤니티 가입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열람 방법
- [실장님] 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 방안 ⇨ 연수법관 부과과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

○ [처장님] 서○○ 같은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처장님] 재항고사건, 행정심판사건, 진정/민원사건
- [실장님] 민원서류 접수 가능한지 여부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연구관실과 상의 ⇨ 소권 남용 논리 등
- 예)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한 대법원 2014두36358 판결 등
- 해외연수법관 수시과제 부과
- 정책연구용역 발주
- 사법정책연구용역

- [실장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관련 피해 사례 ⇨ 대형 로펌 확인
 - 이○○, 김○○○, 박○○에게 부탁
- [실장님] 김○○ 부장님 요청사항 - 의무이행소송 관련 스토리화
- 사법발전재단 : 함○○ 부장판사님(대등재판부, 재판연구원 매뉴얼)
- [실장님] 행정심판위원회 간소화 방안
- [실장님 말씀] 법관연수 관련 Assessment 활용방안 적극 검토
 - 법원장 보임에 활용 가능함
- [실장님 말씀] 전국 재판부로부터 문제 있는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
- 연임법관연수 준비
 - 김○○ 형님이 부탁하신 국내연수 관련 예산 증액 요청 (조○○ 사무관님)
 - 기획총괄부장님 명의로 연수보고서 제출 독촉 메일 발송
- 공공데이터 관련 캠프 현황 파악 보고
- 석사과정 위탁 교육 개선 방안 마련
 - 법관 : 일반직 비율을 50:50
 - 법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석사과정 적극 발굴
 - 법관들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와 같이 근무평정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

- 지원자가 적거나, 일반직 위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예산 불용 처리 ⇨ 예산 항목이 수
용비인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실장님 말씀] 석사 과정 후기 선발 여부도 검토
- 부당소송 관련 ⇨ 법원장 간담회 내용 검토 ⇨ 즉시 시행할 내용 시행착수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 검토
 - 불필요한 회의 불참 가능 여부
- 지금까지의 모든 이메일 확인 ⇨ 캘린더 및 업무계획표에 반영
- 시○○ 판사님 작년도 발송 이메일 전달받기

체크리스트 (2018. 7. 31.)

- 법의 날 기념식 영상 관련 보고
- 판사회의 대응 논리 ⇨ 차장님 보고
- 책장 정리, 책상 정리, 하드디스크 정리
- 사법발전계획 작성
 - 임○○ 부장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문의
- 법원문화연구반
 - 법원문화연구반 과제 추출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배정
 - 전문분야연구회 (3. 31. ~ 4. 10.)
 - 예산배정 연기 여부
 -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숙지

- **박○○ 판사님**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통계 양식 파일 문의 (4. 1.자 이메일)
- **3/24 임○○ 부장님 (3/31)**
 - 사법발전계획 작성 (기한 3/31)
- **차장님 지시사항**
 -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체계
- **[양형실장님] 국제인권법연구회 책자 발간 지원 방안**
 - 예산 지원 방법 구체적으로 검토 ⇨ 조○○ 판사에게 인계
- **[윤○○ 부장님 지시사항] 법관연수지원팀 활동 경과 정리**
 - 매뉴얼화
- **[실장님] 법률안 검토의견 회신**
 -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차장님] 법관 정년퇴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홍보 관련 구상**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나○○ 부탁 - 2015, 2016 전출 심의관**

체크리스트 (2018. 7. 31.)


- 국회 임시회 업무보고 준비
- [처장님] 6. 21. 홍일표 의원님과의 만찬 관련 준비자료 보고
- [차장님] 20대 국회 입법 추진 전략 ☞ 실행 여부 여쭙어 보기
 - 각 실별로 추진 법률 취합
- [처장님] 만화 기증 받는 문제
 - 기증받은 전례가 있는지, 권수는 어떻게 되는지, 우송료는 어떻게 되는지 등
- 처장님
 -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 (국회 속기록)
 - 김진태 의원의 국회 발언 내용 ☞ 김진태 의원에 대한 동향 분석 필요
 - 각급 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더민주당 공약 관련 확인
- [인권법연구회] 책자 관련 예산 지원 완료 여부 확인
- [차장님] 사법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종료 후 반응과 향후 전망
- 각급 법원 연구회 예산 지원
- 각급 법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대법원장님 업무보고,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법사위] 국정감사결과 처리결과 송부
- [사법정책실장님] 홍보 TF 보고서 보완
 - 조직심의관실에 가능한 대우 등 확인
- [사법연수원] 경력별연수 불참 사유서 송부
- [사법정책연구원] 성희룡 내규 대법원장님 승인 관련 처리
- 법원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당선 축하 만찬 여부
- [실장님] 정○○ 사건 관련 제도 개선책 추진 절차 구체화
 - 의견 취합 결과 반영
- [차장님] 사무분담 기준 변경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

- 김○○ 부장님 6/18 산행
- 법원문화연구반 과제 추출
- 나○○ 부탁 - 2015, 2016 전출 심의관
 - 박○○ 대법관님 주최 만찬 준비 위해 필요

- =====
- **책장 정리, 책상 정리, 하드디스크 정리**
 - 하드디스크 구입
 - **사법발전계획 작성**
 - 임○○ 부장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문의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의견**
 -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의견 개선 방안 검토
 - 발렛파크 서비스 문제와 함께 검토
 - **주요 법률**
 - 상고심 개선 관련 민사소송법?
 - 상고법원 관련 법원조직법 등
 - 정재청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 상고심 개선 관련 민사소송법
 - 양형조사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등
 - **박○○ 판사님**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통계 양식 파일 문의 (4. 1.자 이메일)
 - **차장님 지시사항**
 -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체계
 - **[양형실장님] 국제인권법연구회 책자 발간 지원 방안**
 - 예산 지원 방법 구체적으로 검토 ⇨ 조○○ 판사에게 인계
 - **[윤○○ 부장님 지시사항] 법관연수지원팀 활동 경과 정리**
 - 매뉴얼화
 - **[차장님] 법관 정년퇴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홍보 관련 구상**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대법원장님 해외순방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자료집 작성**
- **김○○ 국회 서기관과 점심 식사**
 - 서래마을 정도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
 - 국회 법사위가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는지?
 - 국회 본회의 일정은 어떻게 확정되는지?
 - 국회의 전반에 대한 상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등등
 - 국회선진화법에 대하여도 공부 ⇨ 현재 결정
- **개헌 논의 관련**
 -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구성 상황 점검
 -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활동 상황 점검
 - 헌법재판소의 헌재법 개정의견서 제출 관련 진행상황 점검
- **국회 요구자료 목록 점검**
 -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 배경은 무엇인지 항상 확인해야 함

체크리스트 (2018. 7. 31.)

- [실장님] 홍보조직 개편 TF
- [뉴시스] 사법행정위원회 미국 관련 자료 제공
- [서영교 의원] 형집행정지 관련 부탁
- 법원장 간담회 자료집
- 주간 업무 계획 발표 준비
- [윤○○ 부장님] 모임 일자
- [처장님] 처장님 신임 법관 특강 말씀 자료
- [차장님] 판사회의 순기능
- [차장님] 차○○ 판사 대응 방안
- [양형실장님] 국제인권법연구회 책자 발간 지원 방안
- [재무담당관] 울산법원 미술품 기증받는 절차와 관련하여 기부금품 관련 위원회 설치 및 규칙 제정 필요성
- [윤○○ 부장님 지시사항] 법관연수지원팀 활동 경과 정리  매뉴얼화
- [실장님] 법률안 검토의견 회신
- [실장님] 정책연구용역 연구과제 선정 및 예산 활용과 사법정책연구원의 관계에 대한 차장님 말씀의 뜻을 여쭙어 보고 기초실장님께 보고

[2. 22. 이후]

- [차장님] 법관 정년퇴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차장님] 부정적 언론 보도 대응 방안 - 구체적 실행 계획 작성
- [부장님]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 소지 사무관 재판연구관 근무 방안

○ 2016년도 주요 행사 일정표(책받침 형태) 제작 완성 보고

○ 김○○ 부장님 -> 발표비 50만 원 지급

○ 정책연구용역

- 교수와 법관의 공동 정책연구용역 수행 가부
- 활용 현황 파악

(151121) 차장님 지시사항
법원 커뮤니티 현황
일부 커뮤니티의
폐쇄형 커뮤니티의 발전적 해체 ⇨ 민법상 사단법인화 ⇨ 법원행정처를 감독 관청
행정판례연구회와 동일하게
재정적 지원은 각종 연구용역으로
법원 커뮤니티 전환
형사법연구회 - 형사수석부장
사법연수원LEC
검찰의 경우, 2007년도 형사소송법학회
법률 개정 국면
*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재판 실무에 접목하여 활용했는지 여부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총서 ⇨ 유용한 자료들이 많음
- 해당 실국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책자발간 (대검찰청 ⇨ 신경향)

○ [처장님] 심리상담프로그램 관련 이○○ 국장 이메일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권○○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정책연구용역 활용 현황 파악

○ 기획총괄심의관님 ⇨ 시험출제위원

- 각종 시험 출제위원 (이○○ 부장님)
- 기획교수실에 확인하여 2015년도 시험 출제에 참여하신 강의교수님들 명단 확인
- 강의를 나갈 수 있는 교수님들의 여력 확인

○ 법관연수 관련 아이디어 보고

-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과 법관연수 연계 방안
- 법원행정처 기본계획, 법원장회의 자료 분석 ⇨ 아이템 발굴

◆ 주요 정책 과제
- 법정언행 개선

◆ 독립 강좌 개설 여부
- 필요/ 불필요
- 독립강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법관연수 반영 방법

- ◆ 강좌를 추가할 연수과정
 - 신입법관연수/ 경력별연수/ 재판장연수/ 재판실무연수/ 전문분야연수
 - 온라인연수
- ◆ 법관연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책자, 연구 성과, 각종 자료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 ◆ 추천강사

○ 법관연수 건의사항 취합

- 그동안 보고서에서 “법관연수”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던 내용들

○ 공익법무관 활용방안

- 사법부에 공익근무요원은 배치하면서, 공익법무관은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공익법무관과 점심
- 공익법무관을 행정심판 검토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는 방안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정보공개신청(이의신청) 등 검토에 활용하는 방안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익법무관이 파견되어 행정심판 검토 업무를 하고 있는지
- 국가소송업무, 법률구조업무, 자문업무로 나누어야 함
- 국가소송업무 및 자문 업무의 경우 큰 문제 없음 -> 행정심판, 정보공개신청이의 등으로 확대
- 법률구조업무 -> 시범적으로, 대규모 지방법원 본원에 공익법무관을 법률상담관으로 1명씩 파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개정해야 함

○ 정책연구용역 [처장님 지시사항]

- 수의계약 체결 가능 계약
- 교수들의 경우 실무와 유리된 현상
- 법관 커뮤니티나 사법정책연구원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151024) 김○○ 부장님, 김○○ 판사님께 질문

-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법제도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보면, 재판중계 제도 등에 관하여 외국의 사례를 방대하게 조사하였는데,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당하였고, 어떻게 부탁하여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질문
- 법원행정처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들(홍보심의관실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현황, 공개변론이 20분 지연 송출되고 있다는 점 등)은 각 실국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였는지 질문

○ 처장님 말씀 [법원 友軍 만들기 전략]

- 아래 사람들에 대한 명단 확보 후 사후 관리 방안(연하장 보내기, 사법논집 보내기, 법원소식지 보내기 등) 마련할 것
 - 조사위원(국제실, 정책실, 지원실)
 - 비법관재판연구관
 -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위원
 - 외교부 외무관 등
- 위원회, 상임조정위원, 국선전담

○ 차장님 지시사항 - 1소위 중요 법률안 보고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이○○ 판사님께 질문

- 이행권고결정 권한을 사법보좌관에게 이양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16402)을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하도록 임내현 의원을 접촉, 설득한 구체적 과정
- 전해철 의원이 2015. 7. 10.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16056): 당사자의 소송진술방식 개선
- 의원입법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차장님] 법정언행컨설팅 개선방안 검토할 것

- 구체적으로는, 강의형 연수의 개선방안
- 차장님도 인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강의형 연수를 수강한 사실이 있음

○ [부당소송] 윤○○ 부장님

○ [실장님] 부당소송, 1인 시위 활성화 방안, 매뉴얼 업데이트, 홍보 ⇨ 예산 사용 관련 점검 필요

○ [실장님]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건수 없으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총무과에 알리는 방안
- 매년 공문 시행

○ [실장님]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교수님 정책연구용역 커뮤니티 가입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열람 방법

○ [실장님] 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 방안 ⇨ 연수법관 부과과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

○ [처장님] 서○○ 같은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처장님] 재항고사건, 행정심판사건, 진정/민원사건
- [실장님] 민원서류 접수 가능한지 여부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연구관실과 상의 ⇨ 소권 남용 논리 등
- 예)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한 대법원 2014두36358 판결 등
- 해외연수법관 수시과제 부과

- 정책연구용역 발주
- 사법정책연구용역

- [실장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관련 피해 사례 ⇨ 대형 로펌 확인
 - 이○○, 김○○○, 박○○에게 부탁
- [실장님] 김○○ 부장님 요청사항 - 의무이행소송 관련 스토리화
- [실장님] 행정심판위원회 간소화 방안
- [실장님 말씀] 법관연수 관련 Assessment 활용방안 적극 검토
 - 법원장 보임에 활용 가능함
- [실장님 말씀] 전국 재판부로부터 문제 있는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
- 공공데이터 관련 캠프 현황 파악 보고
- 석사과정 위탁 교육 개선 방안 마련
 - 법관 : 일반직 비율을 50:50
 - 법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석사과정 적극 발굴
 - 법관들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와 같이 근무평정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
 - 지원자가 적거나, 일반직 위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예산 불용 처리 ⇨ 예산 항목이 수 용비인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실장님 말씀] 석사 과정 후기 선발 여부도 검토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 검토
 - 불필요한 회의 불참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2018. 7. 31.)

- 입법추진계획 취합 보고(7. 6.) ⇨ 7. 7. 부장회의 ⇨ 처장님 보고
- 전관비리 근절 토론회 토론자 추천 여부
- 광복절 참석자
- 대한변협
- 예상질의답변(현안)
- 결산전체회의 참석자 확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자 확정
- 결산전체회의 질의 내용 정리 처장님 보고
- **[처장님]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 (국회 속기록)**
- **[처장님] 김진태 의원의 국회 발언 내용**
 - 김진태 의원에 대한 동향 분석 필요
- **[실장님] 개헌 가능의식 2/3 도달 여부 점검**
- **[처장님] 각급 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더민주당 공약 관련 확인**
- **[차장님] 사법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종료 후 반응과 향후 전망
- **각급 법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대법원장님 업무보고,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사법연수원] 경력별연수 불참 사유서 송부**
- **[사법정책연구원] 성희룡 내규 대법원장님 승인 관련 처리**
- **법원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당선 축하 만찬 여부**
- **[차장님] 사무분담 기준 변경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
- **법원문화연구반 과제 추출**

=====

○ [7. 8.] 국제인권법연구회 전관예우토론회 논의 결과 확인

대구지방법원 김○○ 판사입니다.

어제까지는 비가 왔다갔다 했는데 오늘은 대구의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날씨네요.

2016. 7. 8.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중앙법원 20층에서 전관예우 관련 토론회가 열립니다. 전관예우 문제는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면서도 우리 판사들의 현재,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이런 저런 대책들을 내 놓고 있습니다만 그와 별도로 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등 여러 관점에서 토론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차○○ 판사님이 간략한 발제를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열치열이라고 합니다. 전관예우 관련 토론의 뜨거움으로 여름날의 더위를 날려버리시는 건 어떨까요?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김○○ 올림

○ 등기국장님 지시사항

- [7. 1.자 이메일] 존경하는 김 심의관님, 어제 현안보고 때 법원의 감사, 감찰 활동 필요성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향후 예산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생각됩니다. 어제 속기록이 나오면 실무관 혹은 계장님을 통하여 제게 1부 주십시오. 이○○ 올림

○ 법사위원별 관심 사항 파악 ⇨ 위원별로 2~3쪽으로 정리

- 프로필, 컨택포인트, 친분 있는 법관, 가족관계, 교우관계
- 언론보도 분석, 운영 블로그 등 분석
- 법안발의 내역, 자료제출 요구 내역
- 보좌관, 비서관에게 문의

- **책장 정리, 책상 정리, 하드디스크 정리**
 - 하드디스크 구입
- **사법발전계획 작성**
 - 임○○ 부장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문의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의전**
 -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의전 개선 방안 검토
 - 발렛파킹 서비스 문제와 함께 검토
- **주요 법률**
 - 상고심 개선 관련 민사소송법?
 - 상고법원 관련 법원조직법 등
 - 정재청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 상고심 개선 관련 민사소송법
 - 양형조사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등
- **박○○ 판사님**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통계 양식 파일 문의 (4. 1.자 이메일)
- **차장님 지시사항**
 -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체계
- **[양형실장님] 국제인권법연구회 책자 발간 지원 방안**
 - 예산 지원 방법 구체적으로 검토 ⇨ 조○○ 판사에게 인계
- **[윤○○ 부장님 지시사항] 법관연수지원팀 활동 경과 정리**
 - 매뉴얼화
- **[차장님] 법관 정년퇴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홍보 관련 구상**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대법원장님 해외순방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자료집 작성**

○ **김○○ 국회 서기관과 점심 식사**

- 서래마을 정도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
- 국회 법사위가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는지?
- 국회 본회의 일정은 어떻게 확정되는지?
- 국회의 전반에 대한 상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등등
- 국회선진화법에 대하여도 공부 ⇨ 현재 결정

○ **개헌 논의 관련**


-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구성 상황 점검
-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활동 상황 점검
- 헌법재판소의 헌재법 개정의견서 제출 관련 진행상황 점검

○ **국회 요구자료 목록 점검**

-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 배경은 무엇인지 항상 확인해야 함

체크리스트 (2018. 7. 31.)

- **박○○ 판사님**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통계 양식 파일 문의 (4. 1.자 이메일)
- **전문분야연구회 (3. 31. ~ 4. 10.)**
 - 예산배정 연기 여부
- **월례실국장회의 자료집**
 - 월례실국장회의는 개최하지 않더라도 월례실국장회의 자료집은 배포하는지 여부
- **대법관님 행정사항 안내 자료집 배포 준비**
 - 대법관님 행정사항 안내 자료집을 언제 배포하는지 확인
- **3/18 조○○ 교수님**
 - 실장님 운영위원회
- **3/24 임○○ 부장님 (3/31)**
 - 사법발전계획 작성 (기한 3/31)
- **차장님 지시사항**
 -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체계
- **전국수석부장회의 준비**
 - 만찬 사회 시나리오 작성
 - 동영상 확인 ⇨ 전체 일정 점검 및 사회 시나리오 준비
- **한국기독교화해증재원**
- **[실장님] 총선출마자 중 법조인 명단 정리**
- **[차장님] 사법행정위원회 후보군**
- **이○○ 부탁 - 헌법연구회**
- **양형실장님 부탁**
 - 인권법연구회 책자 발간
 - 고법판사 연수 오찬
- **한○○ 판사 부탁**

- 나○○ 부탁 - 2015, 2016 전출 심의관
- 법원장간담회 자료집 법원장커뮤니티 게시
- [실장님] 홍보조직 개편 TF
- 주간 업무 계획 발표 준비
- [윤○○ 부장님] 모임 일자
- [처장님] 처장님 신임 법관 특강 말씀 자료
- [차장님] 판사회의 순기능
- [차장님] 차○○ 판사 대응 방안
- [양형실장님] 국제인권법연구회 책자 발간 지원 방안
- [재무담당관] 울산법원 미술품 기증받는 절차와 관련하여 기부금품 관련 위원회 설치 및 규칙 제정 필요성
- [윤○○ 부장님 지시사항] 법관연수지원팀 활동 경과 정리  매뉴얼화
- [실장님] 법률안 검토의견 회신
- [실장님] 정책연구용역 연구과제 선정 및 예산 활용과 사법정책연구원의 관계에 대한 차장님 말씀의 뜻을 여쭙어 보고 기초실장님께 보고

[2. 22. 이후]

- [차장님] 법관 정년퇴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차장님] 부정적 언론 보도 대응 방안 - 구체적 실행 계획 작성
- [부장님]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 소지 사무관 재판연구관 근무 방안
- 2016년도 주요 행사 일정표(책받침 형태) 제작 완성 보고

○ 김○○ 부장님 -> 발표비 50만 원 지급

○ 정책연구용역

- 교수와 법관의 공동 정책연구용역 수행 가부
- 활용 현황 파악

(151121) 차장님 지시사항

법원 커뮤니티 현황

일부 커뮤니티의

폐쇄형 커뮤니티의 발전적 해체 ⇨ 민법상 사단법인화 ⇨ 법원행정처를 감독 관청
행정판례연구회와 동일하게

재정적 지원은 각종 연구용역으로

법원 커뮤니티 전환

형사법연구회 - 형사수석부장

사법연수원LEC

검찰의 경우, 2007년도 형사소송법학회

법률 개정 국면

*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재판 실무에 접목하여 활용했는지 여부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총서 ⇨ 유용한 자료들이 많음

- 해당 실국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책자발간 (대검찰청 ⇨ 신경향)

○ [처장님] 심리상담프로그램 관련 이○○ 국장 이메일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권○○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정책연구용역 활용 현황 파악

○ 기획총괄심의관님 ⇨ 시험출제위원

- 각종 시험 출제위원 (이○○ 부장님)
- 기획교수실에 확인하여 2015년도 시험 출제에 참여하신 강의교수님들 명단 확인
- 강의를 나갈 수 있는 교수님들의 여력 확인

○ 법관연수 관련 아이디어 보고

-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과 법관연수 연계 방안
- 법원행정처 기본계획, 법원장회의 자료 분석 ⇨ 아이템 발굴

◆ 주요 정책 과제

- 법정언행 개선

◆ 독립 강좌 개설 여부

- 필요/ 불필요
- 독립강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법관연수 반영 방법

◆ 강좌를 추가할 연수과정

- 신입법관연수/ 경력별연수/ 재판장연수/ 재판실무연수/ 전문분야연수
- 온라인연수

◆ 법관연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책자, 연구 성과, 각종 자료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 추천강사

○ **법관연수 건의사항 취합**

- 그동안 보고서에서 “법관연수”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던 내용들

○ **공익법무관 활용방안**

- 사법부에 공익근무요원은 배치하면서, 공익법무관은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공익법무관과 점심
- 공익법무관을 행정심판 검토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는 방안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정보공개신청(이의신청) 등 검토에 활용하는 방안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익법무관이 파견되어 행정심판 검토 업무를 하고 있는지
- 국가소송업무, 법률구조업무, 자문업무로 나누어야 함
- 국가소송업무 및 자문 업무의 경우 큰 문제 없음 -> 행정심판, 정보공개신청 이의 등으로 확대
- 법률구조업무 -> 시범적으로, 대규모 지방법원 본원에 공익법무관을 법률상담관으로 1명씩 파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

○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개정해야 함**

○ **정책연구용역 [처장님 지시사항]**

- 수의계약 체결 가능 계약
- 교수들의 경우 실무와 유리된 현상
- 법관 커뮤니티나 사법정책연구원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151024) 김○○ 부장님, 김○○ 판사님께 질문**

-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법제도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보면, 재판중계 제도 등에 관하여 외국의 사례를 방대하게 조사하였는데,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당하였고, 어떻게 부탁하여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질문
- 법원행정처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들(홍보심의관실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현황, 공개변론이 20분 지연 송출되고 있다는 점 등)은 각 실국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였는지 질문

=====

○ **처장님 말씀 [법원 友軍 만들기 전략]**

- ▣ 아래 사람들에 대한 명단 확보 후 사후 관리 방안(연하장 보내기, 사법논집 보내기, 법원소식지 보내기 등) 마련할 것
 - 조사위원(국제실, 정책실, 지원실)
 - 비법관재판연구관
 -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위원
 - 외교부 외무관 등
- ▣ 위원회, 상임조정위원, 국선전담

○ **차장님 지시사항 - 1소위 중요 법률안 보고**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이○○ 판사님께 질문**

- 이행권고결정 권한을 사법보좌관에게 이양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16402)을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하도록 임내현 의원을 접촉, 설득한 구체적 과정
- 전해철 의원이 2015. 7. 10.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16056): 당사자의 소송진술방식 개선
- 의원입법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차장님] 법정언행컨설팅 개선방안 검토할 것**

- 구체적으로는, 강의형 연수의 개선방안
- 차장님도 인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강의형 연수를 수강한 사실이 있음

○ **[부당소송] 윤○○ 부장님**

○ **[실장님] 부당소송, 1인 시위 활성화 방안, 매뉴얼 업데이트, 홍보**
 ⇨ 예산 사용 관련 점검 필요

○ **[실장님]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건수 없으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총무과에 알리는 방안**

- 매년 공문 시행

○ **[실장님]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교수님 정책연구용역 커뮤니티 가입**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열람 방법**

○ **[실장님] 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 방안** ⇨ 연수법관 부과과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

○ **[처장님] 서○○ 같은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처장님] 재항고사건, 행정심판사건, 진정/민원사건
- [실장님] 민원서류 접수 가능한지 여부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연구관실과 상의 ⇨ 소권 남용 논리 등
- 예)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한 대법원 2014두36358 판결 등
- 해외연수법관 수시과제 부과
- 정책연구용역 발주
- 사법정책연구용역

○ **[실장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관련 피해 사례** ⇨ 대형 로펌 확인

- 이○○, 김○○○, 박○○에게 부탁

○ **[실장님] 김○○ 부장님 요청사항 - 의무이행소송 관련 스토리화**

○ **[실장님] 행정심판위원회 간소화 방안**

- **[실장님 말씀] 법관연수 관련 Assessment 활용방안 적극 검토**
 - 법원장 보임에 활용 가능함
- **[실장님 말씀] 전국 재판부로부터 문제 있는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
- **공공데이터 관련 캠프 현황 파악 보고**
- **석사과정 위탁 교육 개선 방안 마련**
 - 법관 : 일반직 비율을 50:50
 - 법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석사과정 적극 발굴
 - 법관들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와 같이 근무평정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
 - 지원자가 적거나, 일반직 위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예산 불용 처리 ⇨ 예산 항목이 수용비인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실장님 말씀] 석사 과정 후기 선발 여부도 검토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 검토**
 - 불필요한 회의 불참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2018. 7. 31.)

- 주간업무계획 결재 상신
- 판사회의 대응 논리 ⇨ 차장님 보고
- 대법원장님 업무보고 책자 중 언론 홍보 아이템 발굴
 - 기초실 입장
- 책장 정리, 책상 정리, 하드디스크 정리
- 사법발전계획 작성
 - 임○○ 부장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문의
- 법원문화연구반
 - 법원문화연구반 과제 추출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배정
 - 전문분야연구회 (3. 31. ~ 4. 10.)
 - 예산배정 연기 여부
 -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숙지

- **박○○ 판사님**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통계 양식 파일 문의 (4. 1.자 이메일)
- **3/24 임○○ 부장님 (3/31)**
 - 사법발전계획 작성 (기한 3/31)
- **차장님 지시사항**
 -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체계
- **[양형실장님] 국제인권법연구회 책자 발간 지원 방안**
 - 예산 지원 방법 구체적으로 검토 ⇨ 조○○ 판사에게 인계
- **[윤○○ 부장님 지시사항] 법관연수지원팀 활동 경과 정리**
 - 매뉴얼화
- **[실장님] 법률안 검토의견 회신**
 -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차장님] 법관 정년퇴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홍보 관련 구상**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나○○ 부탁 - 2015, 2016 전출 심의관**

체크리스트 (2018. 7. 31.)

- 처장님 - 만화 기증 받는 문제
- 김○○ 부장님
- 정○○ 사건 관련 대법원장님 지시 사항 기초실장님께 보고
 - “전관들의 사건 처리 결과 통계 분석”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관련 점검
 - 2015년도 사법지원실 작성 자료 차장님께 보고
- 각급 법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처장님
 -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 (국회 속기록)
 - 김진태 의원의 국회 발언 내용 → 김진태 의원에 대한 동향 분석 필요
 - 각급 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더민주당 공약 관련 확인
-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지원
 - 박○○ 판사 보고서와 함께 정리,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숙지
 - 예산배정 연기 여부
- 환경법학회 관련 예산 지원 → 예산담당관실
- 법원문화연구반 과제 추출
 - 4. 14.(목) 오전 검토
 - 법원문화연구반 과제 추출
- 헌법재판소 사건 관련 의견 송부 - 서○○ 사건 등
- 나○○ 부탁 - 2015, 2016 전출 심의관
 - 박○○ 대법관님 주최 만찬 준비 위해 필요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반응과 향후 전망
 - 4. 28.(목) 오전 8시 보고
- 판사회의 대응 논리
 - 4. 15.(금) 오전 8시 보고
- [정책실장님] 홍보TF 보완

=====

- **책장 정리, 책상 정리, 하드디스크 정리**

- 하드디스크 구입

- **사법발전계획 작성**

- 임○○ 부장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문의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의견**

-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의견 개선 방안 검토
- 발렛파킹 서비스 문제와 함께 검토

- **주요 법률**

- 상고심 개선 관련 민사소송법?
- 상고법원 관련 법원조직법 등
- 정재청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 상고심 개선 관련 민사소송법
- 양형조사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등

- **박○○ 판사님**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통계 양식 파일 문의 (4. 1.자 이메일)

- **3/24 임○○ 부장님 (3/31)**

- 사법발전계획 작성 (기한 3/31)

- **차장님 지시사항**

-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체계

- **[양형실장님] 국제인권법연구회 책자 발간 지원 방안**

- 예산 지원 방법 구체적으로 검토 ⇨ 조○○ 판사에게 인계

- **[윤○○ 부장님 지시사항] 법관연수지원팀 활동 경과 정리**

- 매뉴얼화

- **법률안 검토의견 회신**

-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형사소송법(김진태 의원) 제출 법률안

○ **[차장님] 법관 정년퇴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홍보 관련 구상**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대법원장님 해외순방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자료집 작성**

○ **김○○ 국회 서기관과 저녁 식사**

- 서래마을 정도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
- 국회 법사위가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는지?
- 국회 본회의 일정은 어떻게 확정되는지?
- 국회의 전반에 대한 상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등등
- 국회선진화법에 대하여도 공부 ⇨ 현재 결정

○ **개헌 논의 관련**

-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구성 상황 점검
-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활동 상황 점검
- 헌법재판소의 헌재법 개정의견서 제출 관련 진행상황 점검

○ **국회 요구자료 목록 점검**

-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 배경은 무엇인지 항상 확인해야 함

체크리스트 (2018. 7. 31.)

- 김○○ 보좌관님 - 정○○ 부장님과 저녁식사
- 조용천 의원실 전○○ 비서관님 - 국민신문고 사건 설명
- 8. 22. 보고 사항
 - 이○○ 대법관님 퇴임 행사 계획
 - 분기실국장 회의 논의 결과
 - 법원장 간담회 세부 계획
 - 사법정책연구원 회의록 보고
 - 에어컨 틀기 ☞ [대법원, 서울중앙]
 - 에어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었음
 - 국회, 검찰 ☞ 판사님들의 불만이 매우 큼
 - 에어컨 틀면 판사님들에 대한 좋은 복지 아이템이 될 것임
 - 법률신문 기사 ☞ 정부 고시 언급
 - 변호사대회 법조비리 근절방안 세미나 토로자로 이○○ 심의관 참석
- 차장님 지시사항 -> 현안 관련 대응 방안
- 각급 법원 순회간담회
 - 8. 22.(월) 오전 중 “수도권 간담회” 보고 완료
 - 세부계획 보고 ☞ 장소: 함지박, 시간계획
 - 법원장님 프로필 보고
 - 각급 법원 현황 보고
 - 처장님 말씀 자료
 - 자료집
 - 함지박 사전 답사 필요
 - 법원도서관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참석 여부
 - 자료집 작성
 - 처장님 말씀 자료
 - 장소 예약, 세부 행사 계획
 - 각 법원 현안, 건의 사항 정리 ☞ 대법원장님 업무보고, 재판 관련 행정사무 감사, 월간 주요 상황 보고
 - 법원장님들 프로필
- 분기실국장회의 결과 배부

- 분기실국장회의 관련 처장님 지시사항 기초실 배부, 보고 여부 점검
- 대한변협 토론회 참석자 확정
 - 이○○ 심의관으로 정해졌다고 처장님, 차장님께 보고
- 최○○ 위원장님 배석 모임 참석 인원 확정 보고
 - 8. 22.(월) 위원장님께 진행 상황 중간보고
- 청문회 노하우, 개선 사항 정리
 - 8. 22.(월)부터 정리
- 국회의원 성향 분석
 - 지역구 ⇨ 지역구 현안, 지역구 내 법원 신설 요구 등, 지역구 관련 소송
 - 출생지 ⇨ 출생지 관련 현안
 - 선거재판 기타 소송 계속 현황
 - 대표 발의 법률안
 - 국회 발언 내용 정리 ⇨ 회의록 분석
- 법사위 위원 성향 분석 ⇨ 국정감사 前 보고 필요
 - 지역구 ⇨ 지역구 현안, 지역구 내 법원 신설 요구 등, 지역구 관련 소송
 - 출생지 ⇨ 출생지 관련 현안
 - 선거재판 기타 소송 계속 현황
 - 대표 발의 법률안
 - 국회 발언 내용 정리 ⇨ 회의록 분석
- 안행위 위원 성향 분석
 - 지역구 ⇨ 지역구 현안, 지역구 내 법원 신설 요구 등, 지역구 관련 소송
 - 출생지 ⇨ 출생지 관련 현안
 - 선거재판 기타 소송 계속 현황
 - 대표 발의 법률안
 - 국회 발언 내용 정리 ⇨ 회의록 분석
- 이○○ 진주지원장님
- 정○○ 행정관님 등 기획1실, 국회팀 컴퓨터 하드의 업무 관련 자료 복사
 - 대용량 하드 디스크에 담아달라고 부탁
- 이○○ 대법관님 석좌교수 임명

- 근무개시일자 확인
- 청문위원 관심사항 분석
- 청문회 리허설 계획 확정
- 분기실국장회의 자료집 작성 안내 메일/ 뒤풀이 장소 확인
- 노조 - 관리직 요구 사항 (관용차량 운전) 8/9 오전까지 보고 완료
- **[차장님]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한 종합 실행계획 작성, 보고**
 - 정○○ 심의관과 상의
- **[차장님] 검찰개혁 논의 상황 정리 보고**
 - 더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 검찰개혁 논의가 사법부에 미칠 영향
- 국민신문고 사건 관련 설명
 - 조용천 의원실
 - 이춘석 의원실
- **[8/29]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검찰 참석 현황**
 - 김○○ 검사와 통화 필요
 - 대한변협 법의 지배를 위한 법률가 대회 중 법조비리 척결방안
- 이○○ 지원장님께 연락
 - 무죄 판결 주문 변경
- 회생법원 추진
 - 인원, 비용 추계
 - 경제 6단체와의 연계 방안
- [차장님] 고○○ 교수님 관련 자료 보고
- [차장님] 4차 산업혁명 관련 보고
- [차장님] 사무분담 기준 변경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
 - 해외연수 법관에 과제 부과
- **[차장님] 사법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종료 후 반응과 향후 전망

- **판사회의 대응 논리**
 - 사법행정위원회와의 관계 더욱 정치하게 정리
- **[처장님]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 (국회 속기록)**
- **[처장님] 김진태 의원의 국회 발언 내용**
 - 김진태 의원에 대한 동향 분석 필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국회 토론회**
 - 자료집 확보
- **[아이디어] 행정소송 관할 확대, 헌법소원 폐지**
- **[실장님] 개헌 가능의식 2/3 도달 여부 점검**
- **[처장님] 각급 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더민주당 공약 관련 확인**
- **각급 법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대법원장님 업무보고,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사법연수원] 경력별연수 불참 사유서 송부**
- **[사법정책연구원] 성희룡 내규 대법원장님 승인 관련 처리**
- **법원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당선 축하 만찬 여부**
- **법원문화연구반 과제 추출**
- **[7. 8.] 국제인권법연구회 전관예우토론회 논의 결과 확인**
- **법사위원별 질의사항 정리**
 - 전체회의에서 질의한 내용 순서대로 정리
- **법사위원별 관심 사항 파악 ⇨ 위원별로 2~3쪽으로 정리**
 - 프로필, 컨택포인트, 친분 있는 법관, 가족관계, 교우관계
 - 언론보도 분석, 운영 블로그 등 분석
 - 출판기념회 내용, 발간 책자, 자서전 등 분석
 - 법안발의 내역, 자료제출 요구 내역
 - 선거범죄 기소, 재판 현황
 - 기타 재판 등 계속 현황

- 보좌관, 비서관에게 문의

○ **사법발전계획 작성**

- 임○○ 부장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문의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의전**

-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의전 개선 방안 검토
- 발렛파킹 서비스 문제와 함께 검토

○ **차장님 지시사항**

-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체계

○ **홍보 관련 구상**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대법원장님 해외순방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자료집 작성**

○ **김○○ 국회 서기관과 점심 식사**

- 서래마을 정도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
- 국회 법사위가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는지?
- 국회 본회의 일정은 어떻게 확정되는지?
- 국회의 전반에 대한 상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등등
- 국회선진화법에 대하여도 공부 ⇨ 현재 결정

○ **개헌 논의 관련**

-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구성 상황 점검
-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활동 상황 점검
- 헌법재판소의 헌재법 개정의견서 제출 관련 진행상황 점검

○ **국회 요구자료 목록 점검**

-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 배경은 무엇인지 항상 확인해야 함

체크리스트 (2018. 7. 31.)

○ **처장님**

- 사법발전계획
-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 (국회 속기록)
- 김진태 의원의 국회 발언 내용 ➡ 김진태 의원에 대한 동향 분석 필요
 - 가) 보좌진 내역
 - 나) 친한 사람들, 컨택 포인트
 - 다) 법원에 계속된 사건 내용
- [사건] '민변'에 대한 보고서 작성 필요

○ **실장님 보고 사항**

- 4. 14. 저녁 입법조사관과 심의관들 사이의 저녁 회식
- 대법관 워크숍 답사 예정(4. 18.)
- 비발디파크 퍼블릭 골프장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20대 총선 당선자 보고**

- 4. 14.(목) 오전 8시 보고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반응과 향후 전망**

- 4. 14.(목) 오전 8시 보고

○ **서울동부지법 업무보고 홍보아이템 추출**

- 4. 14.(목) 오전 송부

○ **법원문화연구반 과제 추출**

- 4. 14.(목) 오전 검토
- 법원문화연구반 과제 추출

○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배정**

- 4. 14.(목) 오전 검토
- 전문분야연구회 (3. 31. ~ 4. 10.)
- 예산배정 연기 여부
-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숙지

○ **법의 날 준비 필요 사항 점검**

- 대법원장님 축사 파일을 법무부에 그대로 전달했는지, 아니면 우리 측에서 직접 말씀판을 가지고 갔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례 확인

- 기초실장님, 비서실장님께 보고
- 전체 행사계획 확인, 행사 동선 확인

○ **나○○ 부탁 - 2015, 2016 전출 심의관**

- 4. 14.(목) 오전 검토
- 박○○ 대법관님 주최 만찬 준비 위해 필요

○ **각급 법원 업무보고 건의사항 취합 정리**

- [1차 취합본] 4. 14.(목) 오후 보고
- [2차 취합본] 4. 18.(월) 오전 8시 보고
- [최종본] 4. 19.(화) 보고

○ **판사회의 대응 논리**

- 4. 15.(금) 오전 8시 보고

○ **홍보TF 발표문 작성**

- 4. 23.(토)부터 시작
- 4. 23.~24. 초고 작성
- 4. 25.~26. 예산, 조직실에 조사 의뢰
- 4. 27.~28. 수정본 작성
- 4. 29. 실장님께 보고, 완성본 송부

=====

○ **책장 정리, 책상 정리, 하드디스크 정리**

- 하드디스크 구입

○ **사법발전계획 작성**

- 임○○ 부장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문의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의견**

-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의견 개선 방안 검토
- 발렛파크 서비스 문제와 함께 검토

○ **주요 법률**

- 상고심 개선 관련 민사소송법?

- 상고법원 관련 법원조직법 등
- 정재청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 상고심 개선 관련 민사소송법
- 양형조사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등

○ **박○○ 판사님**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통계 양식 파일 문의 (4. 1.자 이메일)

○ **3/24 임○○ 부장님 (3/31)**

- 사법발전계획 작성 (기한 3/31)

○ **차장님 지시사항**

-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체계

○ **[양형실장님] 국제인권법연구회 책자 발간 지원 방안**

- 예산 지원 방법 구체적으로 검토 ⇨ 조○○ 판사에게 인계

○ **[윤○○ 부장님 지시사항] 법관연수지원팀 활동 경과 정리**

- 매뉴얼화

○ **법률안 검토의견 회신**

-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형사소송법(김진태 의원) 제출 법률안

○ **[차장님] 법관 정년퇴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홍보 관련 구상**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대법원장님 해외순방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자료집 작성**

○ **김○○ 국회 서기관과 저녁 식사**

- 서래마을 정도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
- 국회 법사위가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는지?
- 국회 본회의 일정은 어떻게 확정되는지?
- 국회의 전반에 대한 상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등등
- 국회선진화법에 대하여도 공부 ⇨ 현재 결정

○ **개헌 논의 관련**

-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구성 상황 점검
-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활동 상황 점검
- 헌법재판소의 헌재법 개정의견서 제출 관련 진행상황 점검

○ **국회 요구자료 목록 점검**

-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 배경은 무엇인지 항상 확인해야 함

체크리스트 (2018. 7. 31.)

○ 개헌 정국 분석 보고서

- 1. 3.(화)까지 작성
- 1. 4.(수) 보고

○ 전문분야연구예산 배정방안

○ 대법원장님 퇴임 기념 논문집 TF 구성

- [1단계] 법원장님 재임 기념 사업 추진
- [2단계] 대법원장님 임기 중 중점추진사업 선정
 - 대법원장님께서 지난 5년간 추진하셨던 업적 정리

○ 법원행정처장 광주고등법원, 지방법원 방문 ☞ 결과 보고

○ 전국 법원 순회 간담회 결과 취합 보고

- 전국 법원장 순회 간담회 논의 결과도 함께 종합하여 보고

○ 2016년 주요 업무계획

- [법원행정처] 12. 5.(월), 12. 12.(월) 주례실국장회의, 12. 8.(목) 부장회의
- [각급법원] 12. 12.(월) 각급 법원에 송부 요청 공문 시행

○ 행정처 TF 현황

○ [차장님, 실장님]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방안

- 홍보조직 개편 논의 포함
- 인력, 조직 진단
- 법원행정처 발전 방향 ⇨ 주요 사법 과제 추출
- 의제설정기능
- 법원행정처 개편
 - 각 심의관 ☞ 타임 시트 작성 필요 (로펌의 타임 시트 작성 노하우 공유)
 - 각 실국별 자료 공유 필요 ☞ 보고서 등록 시스템 도입
 - 자료 보존 필요 ☞ 보고서 등록 시스템 도입
- 조직개편 - 직원 증원
 - [윤리감사관실] 1실 사무관 1명, 실무관 1명, 2실 행정관 1명
 - 조직심의관, 인력운영심의관

○ 재판연구원 증원 설득논리 및 입법추진전략 마련

- 정년 퇴직 및 재판연구원 증원 법안 검토
- 재판연구원 정원 조정 관련 아이디어
 - 법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한법협/ 청년변호사회
 - 재판연구원은 고등법원 대등재판부 부장판사, 단독재판부 부장판사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함이 타당
 - [부장판사 이상 법관 수: 723명]
 - 합의부장: 358명, 단독부장: 186명, 단독 1/2 14명, 비재판보직 52명, 고법판사 113명
 - 2017년 2월, 2017년 5월

○ 대법원장님 시무식사 각급 법원 송부

- 처장님께서 시무식사 하시는지 여부
- 각급 법원 시무식 현황 점검

○ 4분기 실국장회의

-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2017년 대법원 주요 정책 및 입법 추진 과제)
- 2015. 12. 29. ☞ 2016. 1. 8.로 변경

○ 기관장 업무 편람

- 종전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배부
- 사법행정예 관한 워크숍에서 배부
- 기관장 업무 편람 발간을 위한 TF 구성
- 신임법원장 간담회와 연동
 - 예산 업무, 시설 업무
- 신임 법원장 인사 발령 일자, 예상 인원 정도 파악

○ 신임 법원장 간담회 준비

- [전례] 2016. 2. 3.(수) 오후 4시 실시

○ 기조실장님

- 부산가정법원 부부, 청소년 상담아카데미 개설을 위한 예산재배정 요청서
- 재판실무연구회 사례비 지급 방안 검토 (강○○ 법원장님)
- 청주지방법원(?) 건의사항 검토

○ [차장님] 내부 정보 취합 보고 방안, 예방적 감찰 활동 강화

- 각급 법원 풍문, 첩보 수집 방안
 - 각급 법원 정보 취합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점검

- [소관] 기획조정실

- 중요한 것은 정보, 첩보 수집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 사항 추출 ⇨ 반드시 윤리감사관실에서 해야할 논리 필연성은 없음
- 사법행정라인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예방적 감찰 활동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
- 정보, 첩보 수집 후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들은 윤리감사관실로 전달해주는 방식이 적절
- 반대의 경우, 윤리감사관실 특유의 비밀성, 폐쇄성으로 행정처 전체 차원의 기민한 대응이 어려움
 -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큰 문제
 - 역으로, 공유해야 할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임 ⇨ 기초실은 모든 정보를 취합하되, 보안 유지에 책임을 지고, 역으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함
 - 1) 기초실은 공유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조치를 해야 함 ⇨ 윤감실은 개별적 징계 조치만을 할 수 있을 뿐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음 ⇨ 정보 취합 및 취합된 정보의 가공,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출해 낸 후 추진해야 할 각종 정책들을 행정처 내 각 실국에 분배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의 고유의 업무임
 - 2) 기초실이 행사 주관, 자료 취합, 의전 등의 업무만 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임 ⇨ 정책실, 윤감실에는 이와 같은 관점이 존재함
 - 3) 윤감실에서 각종 정보를 기초실에 주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임
- 정보 수집 방법
 - 행정처 심의관들 사이의 정보 공유: 각종 TF 뒤풀이 등을 통해 들은 정보 공유
 - 법원문화연구반 자료는 기초실에서 검토해야 함
- 고충법관제도
- 익명카페, 여성법관커뮤니티
- 코트넷 커뮤니티 동향 보고(주간 보고)
- 기획법관 보고 ⇨ 주간보고로 전환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내부 연구진행상황 점검**
 - (최○○) 판결 정보의 공개 및 이용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2016년 각급 법원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정리**
 - 정책 추진에 반영할만한 모범사례 추출, 정리 ⇨ 행정처 및 각급 법원 공유
- **2017년 사법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 작성**
- **2017년 지원장 연수**
- **대통령 탄핵 절차 검토 ⇨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 가부**
 - 김○○ 교수 논문 읽기
 - 탄핵과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 가부
- **특검법 관련 쟁점 검토**
 - 특검법 관련 논문 읽기
- **최○○ 사건 관련 쟁점 검토**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진행 상황
- **[대법관님 행정사항 안내 ⇨ 2017년 개정판]**
- **국회입법추진계획 보완**
 - (차장님 지시) 국회입법추진계획 파란색으로 표시 & 업데이트 & 구간 표시
- **사법신뢰개선방안**
 - 이행 여부 점검

○ **점심식사**

- 김○○ 민사과장님
- 김○○ 사무관님

○ **재판연구원 간담회 개최 여부**

- 2015. 11. 10. 서울고등 권역, 2015. 11. 12. 대전고등 권역 실시
- 재판연구원 간담회 2015년 실시 ⇨ 2016년 실시 여부

○ **기획법관 제도 개선 방안**

- 검찰에서 기획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기획2에게 과제 부과

○ **함진규 의원님**

- 시흥시법원

○ **국정감사 회의장 언론사 취재 지원 관련 개선 사항 검토**

- 홍보심의관이 항의한 내용 관련
- 수감계획서나 매뉴얼에 반영할 내용이 무엇인지
- 앞으로 기조실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홍보심의관실의 취재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확인하는 프로세스 구축해야 함
- 기조실 사무관은 홍보심의관실 사무관하고도 연락해야 함

○ **대외기관 자료 제출 업무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점검**

- 기획제1심의관(중요)과 기획조정심의관(일상적인 것)의 업무 분장 점검

○ **약식명령 관련 인권위 이행권고결정문 - 처장님 수신인**

- 사법지원실에 진행 상황 확인

○ **국정감사 결과 정리**

- 각급 법원 예상질의답변 취합 ⇨ 사법행정커뮤니티에 게시
- 수감 계획 작성 관련 공보관실과 사전 협의 필요 (공보관님, 홍보심의관님과 전화)

○ **홍보조직 개편**

- 인사운영심의관 공문 ⇨ 직원들의 임용 전 경력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김○○ 부장님**

- 김영란법 적용 여부
- 점심식사 일정 확정

- **각급 법원 TF 현황 파악**
 - 박○○ 판사
- **판사회의, 사법행정위원회, 윤리심의위원회 발족**
- **입법추진과제 점검 ⇨ 입법추진계획 업데이트**
- **규칙 개정**
- **김○○ 보좌관님 - 정○○ 부장님과 저녁식사**
- **처장님 - 법사위원 분석**
- **박○○ 부장님**
 -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안내메일 정정
- **최○○ 제안**
 - 지방지 칼럼에 실리는 칼럼의 경우 각급 법원공보관이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 확립
- **정갑윤 의원실 전○○ 비서**
 - 예산 설명회 개최
- **박주민 의원 ⇨ 언론스크랩 제공 가부**
- **이○○ 대법관님 - 대법관회의 회의록 작성 필요**
- **김영란법**
 - 법률 및 시행령 1회독
 - 헌법재판소 결정문 1회독
 - 윤감실에서 자료 받아서 1회독
- **이○○ 지원장님께 연락**
- **무죄 판결 주문 변경**
-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대응**
 - 김○○ 판사와 유기적 연락 체계 구축
- **법원행정처 전체 행사 취합, 보고 체계 확립**
 - 박○○ 사무관님 ⇨ 매주 행사계획 취합 ⇨ 공보관실 전달
 - 기획1심의관 보고

- 주간보고, 일일보고 ⇨ 카카오톡도 확인

○ 영남권 법원 순회간담회

- 법원장님 프로필 보고
- 각급 법원 현황 보고
- 처장님 말씀 자료
- 자료집
- 드레스 코드, 간식 준비 필요
- 대전 권역 간담회는 자리가 비좁았음

○ 분기실국장회의 관련 처장님 지시사항 기초실 배부, 보고 여부 점검

○ 청문회 노하우, 개선 사항 정리

- 8. 22.(월)부터 정리

○ 법사위 위원 성향 분석 ⇨ 국정감사 前 보고 필요

- 지역구 ⇨ 지역구 현안, 지역구 내 법원 신설 요구 등, 지역구 관련 소송
- 출생지 ⇨ 출생지 관련 현안
- 선거재판 기타 소송 계속 현황
- 대표 발의 법률안
- 국정감사 발언 내용 분석
- 국회 발언 내용 정리 ⇨ 회의록 분석
- 법사위원별 질의사항 정리
 - 전체회의에서 질의한 내용 순서대로 정리
- 법사위원별 관심 사항 파악 ⇨ 위원별로 2~3쪽으로 정리
 - 프로필, 컨택포인트, 친분 있는 법관, 가족관계, 교우관계
 - 언론보도 분석, 운영 블로그 등 분석
 - 출판기념회 내용, 발간 책자, 자서전 등 분석
 - 법안발의 내역, 자료제출 요구 내역
 - 선거범죄 기소, 재판 현황
 - 기타 재판 등 계속 현황
 - 보좌관, 비서관에게 문의

○ 국회의원 성향 분석

- 지역구 ⇨ 지역구 현안, 지역구 내 법원 신설 요구 등, 지역구 관련 소송
- 출생지 ⇨ 출생지 관련 현안
- 선거재판 기타 소송 계속 현황

- 대표 발의 법률안
- 국회 발언 내용 정리 ⇨ 회의록 분석
- 정○○ 행정관님 등 기획1실, 국회팀 컴퓨터 하드의 업무 관련 자료 복사
 - 대용량 하드 디스크에 담아달라고 부탁
- [처장님] 검찰개혁 논의 상황 정리 보고
 - 더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 검찰개혁 논의가 사법부에 미칠 영향
- [차장님] 고○○ 교수님 관련 자료 보고
- [차장님] 4차 산업혁명 관련 보고
- [차장님] 사무분담 기준 변경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
 - 해외연수 법관에 과제 부과
- [차장님] 사법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종료 후 반응과 향후 전망
- 판사회의 대응 논리
 - 사법행정위원회와의 관계 더욱 정치하게 정리
- [처장님]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 (국회 속기록)
- [처장님] 김진태 의원의 국회 발언 내용
 - 김진태 의원에 대한 동향 분석 필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국회 토론회
 - 자료집 확보
- [아이디어] 행정소송 관할 확대, 헌법소원 폐지
- [처장님] 각급 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더민주당 공약 관련 확인
- 각급 법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대법원장님 업무보고,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의전

-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의전 개선 방안 검토
- 발렛파킹 서비스 문제와 함께 검토

○ 국회 요구자료 목록 점검

-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 배경은 무엇인지 항상 확인해야 함

○ 엑스폴더 등 자료 관리 시스템

- 임○○,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체계적인 자료 보관,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
 - 과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함
 -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 시스템 벤치마킹 필요

○ 사법부의 핵심 과제

- 법관 업무량 경감
 - 법관 증원, 재판 보조 인력 증원(로클력 증원, 참여관 감원), 부판사/간이 판사 제도 신설, 사법보좌관 인력 증원, 사법보좌관 제도의 재편성
 - 참여관의 역할 강화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아야 함
 - 법관 증원보다는 재판연구원 증원을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함 ⇨ 법관 증원은 법관 위상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
 - ①단계 재판연구원 증원 ⇨ ②단계 법관 증원
- 법관 근무지 안정
 - 사무분담 장기화/특정법원근무기간 장기화, 지방 근무 회수 최소화
- 부장판사에 대한 대우
 - Seniority의 개념 ⇨ 부장판사에 대한 예우는 불가피
 - 향후 완전한 법조일원화(10년 경력)가 되기 전까지는 부장판사 개념 유지 필요 ⇨ 10년 경력 이상 법관으로만 구성되는 체제가 된다면 부장판사 개념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임
 - 합의부 부장판사는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 ⇨ (관점의 전환) 로클력 배정
 - 과거에도 단독부장에게는 예비판사 배정한 선례 존재
 - 전체 부장판사 중 단독 부장판사의 수 산출
 - 최근 5년간 단독부장판사의 수 산출
 - 부장판사 개념의 전환 ⇨ 합의부 재판장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 **“단독재판장 이상 + 독방 + 로클력”**

- 법관에 대한 예우 강화
 - 법관들은 모두 1인 1실 사용
 - 사무국장과 법관 사이의 의견 서열 확립
 - 4)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의원 사이의 의견 서열과 유사
- 법관에 대한 복지 아이템
 - 가상 인터넷 PC 지급
- 심급구조 재설계
 - 간이사건 형식적 4심화, 실질적 3심제 (간이재판소 ⇨ 1심 법원 ⇨ 항소 법원)
 - 항소심의 사후심화
 - 고등법원을 사실상 상고법원처럼 운영 ⇨ 전제조건은 **간이재판소(구법원) 및 부판사 신설**
 - 대법원 심리범위의 대폭 축소
- 평생법관제 정착
 - 원로법관 제도 도입

체크리스트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 법관연수운영협의회 기본계획 상신
- 사법발전재단 책자 발간 - 행정법원 (조세, 행정 2권) - 이○○ 판사님
- 사법정책연구원 기본과제 신청
- [사법행정TF]
 - 처장님 코트넷 공지글 올리기
- 법관연수 건의사항 취합
 - 그동안 보고서에서 “법관연수”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던 내용들
- 정책연구용역
 -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관련 안내 이메일 발송
 - 교수와 법관의 공동 정책연구용역 수행 가부
 - 활용 현황 파악

(151121) 차장님 지시사항
법원 커뮤니티 현황
일부 커뮤니티의
폐쇄형 커뮤니티의 발전적 해체 ⇨ 민법상 사단법인화 ⇨ 법원행정처를 감독 관청
행정판례연구회와 동일하게
재정적 지원은 각종 연구용역으로
법원 커뮤니티 전환
형사법연구회 - 형사수석부장
사법연수원LEC
검찰의 경우, 2007년도 형사소송법학회
법률 개정 국면
*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재판 실무에 접목하여 활용했는지 여부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총서 ⇨ 유용한 자료들이 많음
- 해당 실국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 법률안 검토의견 회신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각종 시험 출제위원 (이○○ 부장님)
 - 기획교수실에 확인하여 2015년도 시험 출제에 참여하신 강의교수님들 명단 확인
 - 강의를 나갈 수 있는 교수님들의 여력 확인
- =====
-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개정해야 함

○ (151024) 김○○ 부장님, 김○○ 판사님께 질문

-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법제도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보면, 재판중계 제도 등에 관하여 외국의 사례를 반대하게 조사하였는데,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당하였고, 어떻게 부탁하여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질문
- 법원행정처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들(홍보심의관실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현황, 공개변론이 20분 지연 송출되고 있다는 점 등)은 각 실국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였는지 질문

○ 법관연수지원팀, 법관연수 운영협의회 ⇨ 윤○○ 부장님께 보고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기초실 및 다른 각 실국에 배포 (기한 → 8/7)

○ [아이디어] 상고법원 홍보방안 ⇨ Facebook

○ 정책연구용역 [처장님 지시사항]

- 수의계약 체결 가능 계약
- 교수들의 경우 실무와 유리된 현상
- 법관 커뮤니티나 사법정책연구원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 처장님 말씀 [법원 友軍 만들기 전략]

▣ 아래 사람들에 대한 명단 확보 후 사후 관리 방안(연하장 보내기, 사법논집 보내기, 법원소식지 보내기 등) 마련할 것

- 조사위원(국제실, 정책실, 지원실)
- 비법관재판연구관
-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위원
- 외교부 외무관 등

▣ 위원회, 상임조정위원, 국선전담

○ 차장님 지시사항 - 1소위 중요 법률안 보고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이○○ 판사님께 질문

- 이행권고결정 권한을 사법보좌관에게 이양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16402)을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하도록 임내현 의원을 접촉, 설득한 구체적 과정
- 전해철 의원이 2015. 7. 10.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16056): 당사자의 소송진술방식 개선
- 의원입법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김○○ 부장님 -> 발표비 50만 원 지급

○ [차장님] 법정언행컨설팅 개선방안 검토할 것

- 구체적으로는, 강의형 연수의 개선방안
- 차장님도 인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강의형 연수를 수강한 사실이 있음

○ [부당소송] 윤○○ 부장님

- 법정언행 모범 동영상 배포 및 온라인 게재
- [등기국장님] 공탁지원금 관련 대응 방안 → 사법발전재단 현황 면밀히 파악할 것
 - 7/21 다시 지시
- [등기국장님] 공탁금기금운용위원회 규칙 제정
- [차장님] 행정심판규칙 정비
- [처장님] 심리상담프로그램 관련 이○○ 국장 이메일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권○○ 심의관님과 상의
- [실장님] 부당소송, 1인 시위 활성화 방안, 매뉴얼 업데이트, 홍보 ⇨ 예산 사용 관련 점검 필요
- [실장님]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건수 없으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총무과에 알리는 방안
 - 매년 공문 시행
- [실장님] 정책연구용역 예산 사용 관련 상황 점검
- [실장님]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교수님 정책연구용역 커뮤니티 가입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열람 방법
- [실장님] 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 방안 ⇨ 연수법관 부과과 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
- [처장님] 서○○ 같은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처장님] 재항고사건, 행정심판사건, 진정/민원사건
 - [실장님] 민원서류 접수 가능한지 여부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연구관실과 상의 ⇨ 소권 남용 논리 등
 - 예)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한 대법원 2014두36358 판결 등
 - 해외연수법관 수시과제 부과
 - 정책연구용역 발주
 - 사법정책연구용역
- [처장님] (6월 분기실국장 회의 지시사항) 법학전문대학원 대책 마련
- [실장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관련 피해 사례 ⇨ 대형 로펌 확인
 - 이○○, 김○○○, 박○○에게 부탁
- [실장님] 김○○ 부장님 요청사항 - 의무이행소송 관련 스토리화
- 사법발전재단 : 함○○ 부장판사님(대등재판부, 재판연구원 매뉴얼)
- [실장님] 행정심판위원회 간소화 방안
- [실장님 말씀] Assessment 활용방안 적극 검토

- 법원장 보임에 활용 가능함
- [실장님 말씀] 전국 재판부로부터 문제 있는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
- 연임법관연수 준비
 - 김○○ 형님이 부탁하신 국내연수 관련 예산 증액 요청(조○○ 사무관님)
 - 기획총괄부장님 명의로 연수보고서 제출 독촉 메일 발송
- 공공데이터 관련 캠프 현황 파악 보고
- [실장님 말씀] 석사 과정 후기 선발 여부도 검토
- 석사과정 위탁 교육 개선 방안 마련
 - 법관 : 일반직 비율을 50:50
 - 법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석사과정 적극 발굴
 - 법관들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와 같이 근무평정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
 - 지원자가 적거나, 일반직 위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예산 불용 처리 ⇨ 예산 항목이 수 용비인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부당소송 관련 ⇨ 법원장 간담회 내용 검토 ⇨ 즉시 시행할 내용 시행착수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불필요한 회의 불참석 가능 여부) 검토
- 지금까지의 모든 이메일 확인 ⇨ 캘린더 및 업무계획표에 반영
- 시○○ 판사님 작년도 발송 이메일 전달받기

체크리스트 (2018. 7. 31.)

- 신임 처장님 취임사
- [차장님] 코트넷 공지문
- [차장님] 사법행정위원회 구체적 실행 계획
 - 실무지원단 구성
 - 사법행정위원회 코트넷 전용 소통 공간 설립 ⇨ 전정국에 협조 요청
- [처장님] [차장님]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개편 방향
- [윤○○ 부장님 지시사항] 법관연수지원팀 활동 경과 정리
- [실장님] 법률안 검토의견 회신
- [실장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 [차장님] 소통의 창 수신인 - 기획조정실장님 보고
- [실장님] 정책연구용역 연구과제 선정 및 예산 활용과 사법정책연구원의 관계에 대한 차장님 말씀의 뜻을 여쭙어 보고 기초실장님께 보고

[2. 22. 이후]

- [차장님] 법관 정년퇴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차장님] 부정적 언론 보도 대응 방안 - 구체적 실행 계획 작성
- [부장님]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 소지 사무관 재판연구관 근무 방안
- 정책연구용역
- 2016년도 주요 행사 일정표(책받침 형태) 제작 완성 보고

○ 김○○ 부장님 -> 발표비 50만 원 지급

○ 정책연구용역

- 교수와 법관의 공동 정책연구용역 수행 가부
- 활용 현황 파악

(151121) 차장님 지시사항
법원 커뮤니티 현황
일부 커뮤니티의
폐쇄형 커뮤니티의 발전적 해체 ⇨ 민법상 사단법인화 ⇨ 법원행정처를 감독 관청
행정판례연구회와 동일하게
재정적 지원은 각종 연구용역으로
법원 커뮤니티 전환
형사법연구회 - 형사수석부장
사법연수원LEC
검찰의 경우, 2007년도 형사소송법학회
법률 개정 국면
*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재판 실무에 접목하여 활용했는지 여부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총서 ⇨ 유용한 자료들이 많음
- 해당 실국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책자발간 (대검찰청 ⇨ 신경향)

○ [처장님] 심리상담프로그램 관련 이○○ 국장 이메일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권○○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정책연구용역 활용 현황 파악

○ 기획총괄심의관님 ⇨ 시험출제위원

- 각종 시험 출제위원 (이○○ 부장님)
- 기획교수실에 확인하여 2015년도 시험 출제에 참여하신 강의교수님들 명단 확인
- 강의를 나갈 수 있는 교수님들의 여력 확인

○ 법관연수 관련 아이디어 보고

-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과 법관연수 연계 방안
- 법원행정처 기본계획, 법원장회의 자료 분석 ⇨ 아이템 발굴

◆ 주요 정책 과제
- 법정언행 개선

◆ 독립 강좌 개설 여부
- 필요/ 불필요
- 독립강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법관연수 반영 방법

◆ 강좌를 추가할 연수과정

- 신입법관연수/ 경력별연수/ 재판장연수/ 재판실무연수/ 전문분야연수
- 온라인연수

◆ 법관연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책자, 연구 성과, 각종 자료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 추천강사

○ 법관연수 건의사항 취합

- 그동안 보고서에서 “법관연수”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던 내용들

○ 공익법무관 활용방안

- 사법부에 공익근무요원은 배치하면서, 공익법무관은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공익법무관과 점심
- 공익법무관을 행정심판 검토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는 방안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정보공개신청(이의신청) 등 검토에 활용하는 방안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익법무관이 파견되어 행정심판 검토 업무를 하고 있는지
- 국가소송업무, 법률구조업무, 자문업무로 나누어야 함
- 국가소송업무 및 자문 업무의 경우 큰 문제 없음 -> 행정심판, 정보공개신청이의 등으로 확대
- 법률구조업무 -> 시범적으로, 대규모 지방법원 본원에 공익법무관을 법률상담관으로 1명씩 파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개정해야 함

○ 정책연구용역 [처장님 지시사항]

- 수의계약 체결 가능 계약
- 교수들의 경우 실무와 유리된 현상
- 법관 커뮤니티나 사법정책연구원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151024) 김○○ 부장님, 김○○ 판사님께 질문

-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법제도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보면, 재판중계 제도 등에 관하여 외국의 사례를 방대하게 조사하였는데,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당하였고, 어떻게 부탁하여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질문
- 법원행정처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들(홍보심의관실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현황, 공개변론이 20분 지연 송출되고 있다는 점 등)은 각 실국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였는지 질문

○ 처장님 말씀 [법원 友軍 만들기 전략]

- 아래 사람들에 대한 명단 확보 후 사후 관리 방안(연하장 보내기, 사법논집 보내기, 법원소식지 보내기 등) 마련할 것
 - 조사위원(국제실, 정책실, 지원실)
 - 비법관재판연구관
 -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위원
 - 외교부 외무관 등
- 위원회, 상임조정위원, 국선전담

○ 차장님 지시사항 - 1소위 중요 법률안 보고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이○○ 판사님께 질문

- 이행권고결정 권한을 사법보좌관에게 이양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16402)을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하도록 임내현 의원을 접촉, 설득한 구체적 과정
- 전해철 의원이 2015. 7. 10.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16056): 당사자의 소송진술방식 개선
- 의원입법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차장님] 법정언행컨설팅 개선방안 검토할 것

- 구체적으로는, 강의형 연수의 개선방안
- 차장님도 인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강의형 연수를 수강한 사실이 있음

○ [부당소송] 윤○○ 부장님

○ [실장님] 부당소송, 1인 시위 활성화 방안, 매뉴얼 업데이트, 홍보 ⇨ 예산 사용 관련 점검 필요

○ [실장님]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건수 없으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총무과에 알리는 방안
- 매년 공문 시행

○ [실장님]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교수님 정책연구용역 커뮤니티 가입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열람 방법

○ [실장님] 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 방안 ⇨ 연수법관 부과과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

○ [처장님] 서○○ 같은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처장님] 재항고사건, 행정심판사건, 진정/민원사건
- [실장님] 민원서류 접수 가능한지 여부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연구관실과 상의 ⇨ 소권 남용 논리 등
- 예)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한 대법원 2014두36358 판결 등
- 해외연수법관 수시과제 부과

- 정책연구용역 발주
- 사법정책연구용역

- [실장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관련 피해 사례 ⇨ 대형 로펌 확인
 - 이○○, 김○○○, 박○○에게 부탁
- [실장님] 김○○ 부장님 요청사항 - 의무이행소송 관련 스토리화
- [실장님] 행정심판위원회 간소화 방안
- [실장님 말씀] 법관연수 관련 Assessment 활용방안 적극 검토
 - 법원장 보임에 활용 가능함
- [실장님 말씀] 전국 재판부로부터 문제 있는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
- 공공데이터 관련 캠프 현황 파악 보고
- 석사과정 위탁 교육 개선 방안 마련
 - 법관 : 일반직 비율을 50:50
 - 법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석사과정 적극 발굴
 - 법관들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와 같이 근무평정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
 - 지원자가 적거나, 일반직 위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예산 불용 처리 ⇨ 예산 항목이 수 용비인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실장님 말씀] 석사 과정 후기 선발 여부도 검토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 검토
 - 불필요한 회의 불참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2018. 7. 31.)

- [차장님]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반응과 향후 전망
- [차장님] 판사회의 대응 논리
- [실장님] 각급 법원 업무보고 건의사항 취합 정리
- 법원문화연구반
 - 법원문화연구반 과제 추출
-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배정
 - 전문분야연구회 (3. 31. ~ 4. 10.)
 - 예산배정 연기 여부
 -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숙지
- 책장 정리, 책상 정리, 하드디스크 정리
- 사법발전계획 작성
 - 임○○ 부장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문의
- 법의 날 준비 필요 사항 점검
- 4월 대법관 행정회의 관련
 - 대법관님 행정사항 안내 자료집 배포 여부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의전
 -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의전 개선 방안 검토
 - 발렛파킹 서비스 문제와 함께 검토
- 대법원장님 해외순방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자료집 작성

○ **주요 법률**

- 상고심 개선 관련 민사소송법?
- 상고법원 관련 법원조직법 등
- 정재청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 상고심 개선 관련 민사소송법
- 양형조사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등

○ **박○○ 판사님**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통계 양식 파일 문의 (4. 1.자 이메일)

○ **3/24 임○○ 부장님 (3/31)**

- 사법발전계획 작성 (기한 3/31)

○ **차장님 지시사항**

-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체계

○ **[양형실장님] 국제인권법연구회 책자 발간 지원 방안**

- 예산 지원 방법 구체적으로 검토 ⇨ 조○○ 판사에게 인계

○ **[윤○○ 부장님 지시사항] 법관연수지원팀 활동 경과 정리**

- 매뉴얼화

○ **법률안 검토의견 회신**

-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형사소송법(김진태 의원) 제출 법률안

○ **[차장님] 법관 정년퇴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홍보 관련 구상**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나○○ 부탁 - 2015, 2016 전출 심의관**

- 박○○ 대법관님 주최 만찬 준비 위해 필요

○ **김○○ 국회 서기관과 저녁 식사**

- 서래마을 정도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
- 국회 법사위가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는지?
- 국회 본회의 일정은 어떻게 확정되는지?
- 국회의 전반에 대한 상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등등
- 국회선진화법에 대하여도 공부 ⇨ 현재 결정

○ **개헌 논의 관련**

-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구성 상황 점검
-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활동 상황 점검
- 헌법재판소의 헌재법 개정의견서 제출 관련 진행상황 점검

○ **국회 요구자료 목록 점검**

-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 배경은 무엇인지 항상 확인해야 함
-

체크리스트 (2018. 7. 31.)

- [처장님] 처장님 신임 법관 특강 말씀 자료
- [차장님] 판사회의 순기능
- [차장님] 차○○ 판사 대응 방안
- [양형실장님]
- [재무담당관] 울산법원 미술품 기증받는 절차와 관련하여 기부금품 관련 위원회 설치 및 규칙 제정 필요성
- [차장님] 코트넷 공지문
- [차장님] 사법행정위원회 구체적 실행 계획
 - 실무지원단 구성
 - 사법행정위원회 코트넷 전용 소통 공간 설립 ⇨ 전정국에 협조 요청
- [실장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 [처장님] [차장님]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개편 방향
- [윤○○ 부장님 지시사항] 법관연수지원팀 활동 경과 정리
- [실장님] 법률안 검토의견 회신
- [차장님] 소통의 창 수신인 - 기획조정실장님 보고
- [실장님] 정책연구용역 연구과제 선정 및 예산 활용과 사법정책연구원의 관계에 대한 차장님 말씀의 뜻을 여쭙어 보고 기초실장님께 보고

[2. 22. 이후]

- [차장님] 법관 정년퇴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사법지원총괄] 디지털 포렌식 과정
- [차장님] 부정적 언론 보도 대응 방안 - 구체적 실행 계획 작성
- [부장님]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 소지 사무관 재판연구관

근무 방안

○ 정책연구용역

○ 2016년도 주요 행사 일정표(책받침 형태) 제작 완성 보고

○ 김○○ 부장님 -> 발표비 50만 원 지급

○ 정책연구용역

- 교수와 법관의 공동 정책연구용역 수행 가부
- 활용 현황 파악

(151121) 차장님 지시사항
법원 커뮤니티 현황
일부 커뮤니티의
폐쇄형 커뮤니티의 발전적 해체 ⇨ 민법상 사단법인화 ⇨ 법원행정처를 감독 관청
행정판례연구회와 동일하게
재정적 지원은 각종 연구용역으로
법원 커뮤니티 전환
형사법연구회 - 형사수석부장
사법연수원LEC
검찰의 경우, 2007년도 형사소송법학회
법률 개정 국면
*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재판 실무에 접목하여 활용했는지 여부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총서 ⇨ 유용한 자료들이 많음
- 해당 실국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책자발간 (대검찰청 ⇨ 신경향)

○ [처장님] 심리상담프로그램 관련 이○○ 국장 이메일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권○○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정책연구용역 활용 현황 파악

○ 기획총괄심의관님 ⇨ 시험출제위원

- 각종 시험 출제위원 (이○○ 부장님)
- 기획교수실에 확인하여 2015년도 시험 출제에 참여하신 강의교수님들 명단 확인
- 강의를 나갈 수 있는 교수님들의 여력 확인

○ 법관연수 관련 아이디어 보고

-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과 법관연수 연계 방안
- 법원행정처 기본계획, 법원장회의 자료 분석 ⇨ 아이템 발굴

◆ 주요 정책 과제
- 법정언행 개선

◆ 독립 강좌 개설 여부
- 필요/ 불필요
- 독립강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법관연수 반영 방법

- ◆ 강좌를 추가할 연수과정
 - 신입법관연수/ 경력별연수/ 재판장연수/ 재판실무연수/ 전문분야연수
 - 온라인연수
- ◆ 법관연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책자, 연구 성과, 각종 자료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 ◆ 추천강사

○ 법관연수 건의사항 취합

- 그동안 보고서에서 “법관연수”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던 내용들

○ 공익법무관 활용방안

- 사법부에 공익근무요원은 배치하면서, 공익법무관은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공익법무관과 점심
- 공익법무관을 행정심판 검토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는 방안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정보공개신청(이의신청) 등 검토에 활용하는 방안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익법무관이 파견되어 행정심판 검토 업무를 하고 있는지
- 국가소송업무, 법률구조업무, 자문업무로 나누어야 함
- 국가소송업무 및 자문 업무의 경우 큰 문제 없음 -> 행정심판, 정보공개신청이의 등으로 확대
- 법률구조업무 -> 시범적으로, 대규모 지방법원 본원에 공익법무관을 법률상담관으로 1명씩 파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개정해야 함

○ 정책연구용역 [처장님 지시사항]

- 수의계약 체결 가능 계약
- 교수들의 경우 실무와 유리된 현상
- 법관 커뮤니티나 사법정책연구원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151024) 김○○ 부장님, 김○○ 판사님께 질문

-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법제도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보면, 재판중계 제도 등에 관하여 외국의 사례를 방대하게 조사하였는데,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당하였고, 어떻게 부탁하여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질문
- 법원행정처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들(홍보심의관실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현황, 공개변론이 20분 지연 송출되고 있다는 점 등)은 각 실국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였는지 질문

○ 처장님 말씀 [법원 友軍 만들기 전략]

- 아래 사람들에 대한 명단 확보 후 사후 관리 방안(연하장 보내기, 사법논집 보내기, 법원소식지 보내기 등) 마련할 것
 - 조사위원(국제실, 정책실, 지원실)
 - 비법관재판연구관
 -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위원
 - 외교부 외무관 등
- 위원회, 상임조정위원, 국선전담

○ 차장님 지시사항 - 1소위 중요 법률안 보고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이○○ 판사님께 질문

- 이행권고결정 권한을 사법보좌관에게 이양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16402)을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하도록 임내현 의원을 접촉, 설득한 구체적 과정
- 전해철 의원이 2015. 7. 10.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16056): 당사자의 소송진술방식 개선
- 의원입법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차장님] 법정언행컨설팅 개선방안 검토할 것

- 구체적으로는, 강의형 연수의 개선방안
- 차장님도 인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강의형 연수를 수강한 사실이 있음

○ [부당소송] 윤○○ 부장님

○ [실장님] 부당소송, 1인 시위 활성화 방안, 매뉴얼 업데이트, 홍보 ⇨ 예산 사용 관련 점검 필요

○ [실장님]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건수 없으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총무과에 알리는 방안
- 매년 공문 시행

○ [실장님]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교수님 정책연구용역 커뮤니티 가입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열람 방법

○ [실장님] 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 방안 ⇨ 연수법관 부과과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

○ [처장님] 서○○ 같은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처장님] 재항고사건, 행정심판사건, 진정/민원사건
- [실장님] 민원서류 접수 가능한지 여부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연구관실과 상의 ⇨ 소권 남용 논리 등
- 예)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한 대법원 2014두36358 판결 등
- 해외연수법관 수시과제 부과

- 정책연구용역 발주
- 사법정책연구용역

- [실장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관련 피해 사례 ⇨ 대형 로펌 확인
 - 이○○, 김○○○, 박○○에게 부탁
- [실장님] 김○○ 부장님 요청사항 - 의무이행소송 관련 스토리화
- [실장님] 행정심판위원회 간소화 방안
- [실장님 말씀] 법관연수 관련 Assessment 활용방안 적극 검토
 - 법원장 보임에 활용 가능함
- [실장님 말씀] 전국 재판부로부터 문제 있는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
- 공공데이터 관련 캠프 현황 파악 보고
- 석사과정 위탁 교육 개선 방안 마련
 - 법관 : 일반직 비율을 50:50
 - 법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석사과정 적극 발굴
 - 법관들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와 같이 근무평정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
 - 지원자가 적거나, 일반직 위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예산 불용 처리 ⇨ 예산 항목이 수 용비인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실장님 말씀] 석사 과정 후기 선발 여부도 검토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 검토
 - 불필요한 회의 불참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2018. 7. 31.)

○ **처장님**

-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 (국회 속기록)
- 김진태 의원의 국회 발언 내용 ➡ 김진태 의원에 대한 동향 분석 필요
가. 보좌진 내역
나. 친한 사람들, 컨택 포인트
다. 법원에 계속된 사건 내용
- 각급 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더민주당 공약 관련 확인
- [사건] '민변'에 대한 보고서 작성 필요

○ **실장님 보고 사항**

- 대법관 워크숍 장소
- 법조협회 서면결의 (조○○ 검사)
- 환경법학회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반응과 향후 전망**

- 4. 28.(목) 오전 8시 보고

○ **서울동부지법 업무보고 홍보아이템 추출**

- 4. 14.(목) 오전 송부

○ **법원문화연구반 과제 추출**

- 4. 14.(목) 오전 검토
- 법원문화연구반 과제 추출

○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배정**

- 4. 14.(목) 오전 검토
- 전문분야연구회 (3. 31. ~ 4. 10.)
- 예산배정 연기 여부
-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숙지

○ **나○○ 부탁 - 2015, 2016 전출 심의관**

- 4. 14.(목) 오전 검토
- 박○○ 대법관님 주최 만찬 준비 위해 필요

○ **각급 법원 업무보고 건의사항 취합 정리**

- [1차 취합본] 4. 14.(목) 오후 보고

- [2차 취합본] 4. 18.(월) 오전 8시 보고
- [최종본] 4. 19.(화) 보고

○ **판사회의 대응 논리**

- 4. 15.(금) 오전 8시 보고

○ **홍보TF 발표문 작성**

- 4. 23.(토)부터 시작
- 4. 23.~24. 초고 작성
- 4. 25.~26. 예산, 조직실에 조사 의뢰
- 4. 27.~28. 수정본 작성
- 4. 29. 실장님께 보고, 완성본 송부

=====

○ **책장 정리, 책상 정리, 하드디스크 정리**

- 하드디스크 구입

○ **사법발전계획 작성**

- 임○○ 부장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문의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의견**

-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의견 개선 방안 검토
- 발렛파크 서비스 문제와 함께 검토

○ **주요 법률**

- 상고심 개선 관련 민사소송법?
- 상고법원 관련 법원조직법 등
- 정재청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 상고심 개선 관련 민사소송법
- 양형조사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등

○ **박○○ 판사님**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통계 양식 파일 문의 (4. 1.자 이메일)

○ **3/24 임○○ 부장님 (3/31)**

- 사법발전계획 작성 (기한 3/31)
- **차장님 지시사항**
 -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체계
- **[양형실장님] 국제인권법연구회 책자 발간 지원 방안**
 - 예산 지원 방법 구체적으로 검토 ⇨ 조○○ 판사에게 인계
- **[윤○○ 부장님 지시사항] 법관연수지원팀 활동 경과 정리**
 - 매뉴얼화
- **법률안 검토의견 회신**
 -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형사소송법(김진태 의원) 제출 법률안
- **[차장님] 법관 정년퇴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홍보 관련 구상**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대법원장님 해외순방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자료집 작성**
- **김○○ 국회 서기관과 저녁 식사**
 - 서래마을 정도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
 - 국회 법사위가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는지?
 - 국회 본회의 일정은 어떻게 확정되는지?
 - 국회의 전반에 대한 상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등등
 - 국회선진화법에 대하여도 공부 ⇨ 현재 결정
- **개헌 논의 관련**
 -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구성 상황 점검
 -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활동 상황 점검
 - 헌법재판소의 헌재법 개정의견서 제출 관련 진행상황 점검
- **국회 요구자료 목록 점검**
 -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 배경은 무엇인지 항상 확인해야 함

체크리스트 (2018. 7. 31.)

- **사법행정발전을 위한 세미나** ⇨ **각 실국별로 의견 취합**
 - 기조실장님 강의 자료 ⇨ 전체 실국 취합(특히, 예산, 조직, 시설 등)
- **분기실국장회의 자료집**
- **홍일표 의원님 이○○ 비서관님께 메일 보내기**
- **박범계 의원실 배○○ 보좌관님 부탁 사항 - 몸배석**
- **[차장님] 기획총괄심의관 역할 관련 보고서**
- **[기조실장님] 대선 후보 공약 분석 보고**
- **2017년 주요 업무 계획 검토**
 - 법원행정처 주요 업무 계획 인쇄 의뢰
- **제20대 국회 입법추진계획 수정, 보완**
- **처장님 사법정책연구원 심포지엄 축사 상신**
- **권○○ 위원장님 증인 구인 관련 법률안 검토 보고**
- **권○○ 대법관님 각급 법원 방문 계획**
- **법원행정처장 광주고등법원, 지방법원 방문** 👁 **결과 보고**
- **전국 법원 순회 간담회 결과 취합 보고**
 - 2016년 8월 전국 법원장 순회 간담회 논의 결과도 함께 종합하여 보고
- **차장님** ⇨ **2. 1. 재판연구원 강의 자료**
- **개헌대응반 관련 주제 정리 배분**
- **(1. 23.) 기관장 업무 편람 발간**
 - 주례실국장회의 보고 ⇨ **의견 취합**
 - 기관장 업무 편람 발간을 위한 TF 구성
- **신임 법원장 간담회 기본계획 수립**
 - 1. 19.(목) 부장회의 보고
- **국제법률심포지엄 주제 선정**

- **전문분야연구회 2017년 운영 방향 및 예산 배정 방안**
- **[기조실장님] 행정처 TF 현황**
- **[차장님, 실장님]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방안**
 - 홍보조직 개편 논의 포함, 인력, 조직 진단
 - 법원행정처 발전 방향 ⇨ 주요 사법 과제 추출
 - 의제설정기능, 법원행정처 개편
 - 각 심의관 ⇨ 타임 시트 작성 필요 (로펌의 타임 시트 작성 노하우 공유)
 - 각 실국별 자료 공유 필요 ⇨ 보고서 등록 시스템 도입
 - 자료 보존 필요 ⇨ 보고서 등록 시스템 도입
 - 조직개편 - 직원 증원
 - [윤리감사관실] 1실 사무관 1명, 실무관 1명, 2실 행정관 1명
 - 조직심의관, 인력운영심의관
- **분기실국장회의 ⇨ 1. 24.**
 - 분기실국장회의 관련 처장님 기조실 관련 지시사항 이행 여부 점검
- **백서 발간 TF**
 - 예산 관련 검토, 사법발전계획, 사법의 현황과 전망 책자 등 파일 업로드
 - 대법원장님 임기 중 중점추진사업 선정
 - 대법원장님께서 지난 5년간 추진하셨던 업적 정리

- 대법관님 행정사항 안내 ⇨ 2017년 개정판
- 사법신뢰개선방안
 - 이행 여부 점검
- 대법관님 행정사항 안내 2017년도판 업데이트
 - 김○○ 대법관님 등 포함
- 이○○ 대법관님 퇴임 관련 안내 자료
- 기조실장님
 - 부산가정법원 부부, 청소년 상담아카데미 개선을 위한 예산재배정 요청서
 - 재판실무연구회 사례비 지급 방안 검토 (강○○ 법원장님)
 - 청주지방법원(?) 건의사항 검토

○ 개헌 정국 분석 보고서

○ [차장님] 내부 정보 취합 보고 방안, 예방적 감찰 활동 강화

- 각급 법원 풍문, 첩보 수집 방안
 - 각급 법원 정보 취합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점검
- [소관] 기획조정실
- 중요한 것은 정보, 첩보 수집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 사항 추출 ⇨ 반드시 윤리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논리 필연성은 없음
- 사법행정라인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예방적 감찰 활동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
- 정보, 첩보 수집 후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들은 윤리감사관실로 전달해주는 방식이 적절
- 반대의 경우, 윤리감사관실 특유의 비밀성, 폐쇄성으로 행정처 전체 차원의 기민한 대응이 어려움
 -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큰 문제
 - 역으로, 공유해야 할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임 ⇨ 기초실은 모든 정보를 취합하되, 보안 유지에 책임을 지고, 역으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함
 - 1) 기초실은 공유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조치를 해야 함 ⇨ 윤감실은 개별적 징계 조치만을 할 수 있을 뿐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음 ⇨ 정보 취합 및 취합된 정보의 가공,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출해 낸 후 추진해야 할 각종 정책들을 행정처 내 각 실국에 분배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의 고유의 업무임
 - 2) 기초실이 행사 주관, 자료 취합, 의견 등의 업무만 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임 ⇨ 정책실, 윤감실에는 이와 같은 관점이 존재함
 - 3) 윤감실에서 각종 정보를 기초실에 주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임
- 정보 수집 방법
 - 행정처 심의관들 사이의 정보 공유: 각종 TF 뒤풀이 등을 통해 들은 정보 공유
 - 법원문화연구반 자료는 기초실에서 검토해야 함
- 고충법관제도
- 익명카페, 여성법관커뮤니티
- 코트넷 커뮤니티 동향 보고(주간 보고)
- 기획법관 보고 ⇨ 주간보고로 전환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내부 연구진행상황 점검**
 - (최○○) 판결 정보의 공개 및 이용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2016년 각급 법원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정리**
 - 정책 추진에 반영할만한 모범사례 추출, 정리 ⇨ 행정처 및 각급 법원 공유
- **2017년 사법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 작성**
- **2017년 지원장 연수**
- **대통령 탄핵 절차 검토 ⇨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 가부**
 - 김○○ 교수 논문 읽기
 - 탄핵과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 가부
- **특검법 관련 쟁점 검토**
 - 특검법 관련 논문 읽기
- **최○○ 사건 관련 쟁점 검토**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진행 상황
- **재판연구원 간담회 개최 여부**
 - 2015. 11. 10. 서울고등 권역, 2015. 11. 12. 대전고등 권역 실시
 - 재판연구원 간담회 2015년 실시 ⇨ 2016년 실시 여부
- **기획법관 제도 개선 방안**
 - 검찰에서 기획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기획2에게 과제 부과
- **함진규 의원님**
 - 시흥시법원
- **국정감사 회의장 언론사 취재 지원 관련 개선 사항 검토**
 - 홍보심의관이 항의한 내용 관련
 - 수감계획서나 매뉴얼에 반영할 내용이 무엇인지
 - 앞으로 기조실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홍보심의관실의 취재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확인하는 프로세스 구축해야 함
 - 기조실 사무관은 홍보심의관실 사무관하고도 연락해야 함
- **대외기관 자료 제출 업무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점검**
 - 기획제1심의관(중요)과 기획조정심의관(일상적인 것)의 업무 분장 점검

- **약식명령 관련 인권위 이행권고결정문 - 처장님 수신인**
 - 사법지원실에 진행 상황 확인
- **국정감사 결과 정리**
 - 각급 법원 예상질의답변 취합 ➡ 사법행정커뮤니티에 게시
 - 수감 계획 작성 관련 공보관실과 사전 협의 필요 (공보관님, 홍보심의관님과 전화)
- **홍보조직 개편**
 - 인사운영심의관 공문 ➡ 직원들의 임용 전 경력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김○○ 부장님**
 - 김영란법 적용 여부
 - 점심식사 일정 확정
- **각급 법원 TF 현황 파악**
 - 박○○ 판사
- **판사회의, 사법행정위원회, 윤리심의위원회 발족**
- **김○○ 보좌관님 - 정○○ 부장님과 저녁식사**
- **최○○ 제안**
 - 지방지 칼럼에 실리는 칼럼의 경우 각급 법원공보관이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 확립
- **정갑윤 의원실 전○○ 비서**
 - 예산 설명회 개최
- **박주민 의원 ⇨ 언론스크랩 제공 가부**
- **이○○ 대법관님 - 대법관회의 회의록 작성 필요**
- **김영란법**
 - 법률 및 시행령 1회독
 - 헌법재판소 결정문 1회독
 - 윤감실에서 자료 받아서 1회독
- **이○○ 지원장님께 연락**
- **무죄 판결 주문 변경**

○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대응**

- 김○○ 판사와 유기적 연락 체계 구축

○ **법원행정처 전체 행사 취합, 보고 체계 확립**

- 박○○ 사무관님 ⇨ 매주 행사계획 취합 ⇨ 공보관실 전달
- 기획1심의관 보고
- 주간보고, 일일보고 ⇨ 카카오톡도 확인

○ **청문회 노하우, 개선 사항 정리**

- 8. 22.(월)부터 정리

○ **법사위 위원 성향 분석 ⇨ 국정감사 前 보고 필요**

- 지역구 ⇨ 지역구 현안, 지역구 내 법원 신설 요구 등, 지역구 관련 소송
- 출생지 ⇨ 출생지 관련 현안
- 선거재판 기타 소송 계속 현황
- 대표 발의 법률안
- 국정감사 발언 내용 분석
- 국회 발언 내용 정리 ⇨ 회의록 분석
- 법사위원별 질의사항 정리
 - 전체회의에서 질의한 내용 순서대로 정리
- 법사위원별 관심 사항 파악 ⇨ **위원별로 2~3쪽으로 정리**
 - 프로필, 컨택포인트, 친분 있는 법관, 가족관계, 교우관계
 - 언론보도 분석, 운영 블로그 등 분석
 - 출판기념회 내용, 발간 책자, 자서전 등 분석
 - 법안발의 내역, 자료제출 요구 내역
 - 선거범죄 기소, 재판 현황
 - 기타 재판 등 계속 현황
 - 보좌관, 비서관에게 문의

○ **국회의원 성향 분석**

- 지역구 ⇨ 지역구 현안, 지역구 내 법원 신설 요구 등, 지역구 관련 소송
- 출생지 ⇨ 출생지 관련 현안
- 선거재판 기타 소송 계속 현황
- 대표 발의 법률안
- 국회 발언 내용 정리 ⇨ 회의록 분석

○ **기획1실, 국회팀 컴퓨터 하드의 업무 관련 자료 복사**

- 대용량 하드 디스크에 담아달라고 부탁
- **[처장님] 검찰개혁 논의 상황 정리 보고**
 - 더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 검찰개혁 논의가 사법부에 미칠 영향
- [처장님] 고○○ 교수님 관련 자료 보고
- [처장님] 4차 산업혁명 관련 보고
- [처장님] 사무분담 기준 변경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
 - 해외연수 법관에 과제 부과
- **[처장님] 사법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종료 후 반응과 향후 전망
- **판사회의 대응 논리**
 - 사법행정위원회와의 관계 더욱 정치하게 정리
- **[처장님]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 (국회 속기록)**
- **[처장님] 김진태 의원의 국회 발언 내용**
 - 김진태 의원에 대한 동향 분석 필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국회 토론회**
 - 자료집 확보
- [아이디어] 행정소송 관할 확대, 헌법소원 폐지
- **[처장님] 각급 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더민주당 공약 관련 확인**
- **각급 법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대법원장님 업무보고,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의전**
 -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의전 개선 방안 검토
 - 발렛파킹 서비스 문제와 함께 검토

○ **국회 요구자료 목록 점검**

-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 배경은 무엇인지 항상 확인해야 함

○ **엑스폴더 등 자료 관리 시스템**

- 임○○,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체계적인 자료 보관,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
 - 과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함
 -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 시스템 벤치마킹 필요

2015. 10. 24. 체크리스트

○ (151024) 김○○ 부장님, 김○○ 판사님께 질문

-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법제도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보면, 재판중계 제도 등에 관하여 외국의 사례를 방대하게 조사하였는데,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당하였고, 어떻게 부탁하여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질문
- 법원행정처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들(홍보심의관실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현황, 공개변론이 20분 지연 송출되고 있다는 점 등)은 각 실국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였는지 질문

○ 법관연수지원팀, 법관연수 운영협의회 ⇨ 윤○○ 부장님께 보고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기초실 및 다른 각 실국에 배포 (기한 → 8/7)

○ [아이디어] 상고법원 홍보방안 ⇨ Facebook

○ 정책연구용역 [처장님 지시사항]

- 수의계약 체결 가능 계약
- 교수들의 경우 실무와 유리된 현상
- 법관 커뮤니티나 사법정책연구원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 처장님 말씀 [법원 友軍 만들기 전략]

■ 아래 사람들에 대한 명단 확보 후 사후 관리 방안(연하장 보내기, 사법논집 보내기, 법원소식지 보내기 등) 마련할 것

- 조사위원(국제실, 정책실, 지원실)
- 비법관재판연구원
-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위원
- 외교부 외무관 등

■ 위원회, 상임조정위원, 국선전담

○ 차장님 지시사항 - 1소위 중요 법률안 보고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원님 지시사항 이행

○ 이○○ 판사님께 질문

- 이행권고결정 권한을 사법보좌관에게 이양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16402)을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하도록 임내현 의원을 접촉, 설득한 구체적 과정
- 전해철 의원이 2015. 7. 10.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16056): 당사자의 소송진술방식 개선
- 의원입법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김○○ 부장님 -> 발표비 50만 원 지급

○ [차장님] 법정언행컨설팅 개선방안 검토할 것

- 구체적으로는, 강의형 연수의 개선방안
- 차장님도 인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강의형 연수를 수강한 사실이 있음

- [부당소송] 윤○○ 부장님
- 법정언행 모범 동영상 배포 및 온라인 게재
- [등기국장님] 공탁지원금 관련 대응 방안 → 사법발전재단 현황 면밀히 파악할 것
 - 7/21 다시 지시
- [등기국장님] 공탁금기금운용위원회 규칙 제정
- [차장님] 행정심판규칙 정비
- [처장님] 심리상담프로그램 관련 이○○ 국장 이메일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권○○ 심의관님과 상의
- [실장님] 부당소송, 1인 시위 활성화 방안, 매뉴얼 업데이트, 홍보 ⇨ 예산 사용 관련 점검 필요
- [실장님]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건수 없으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총무과에 알리는 방안
 - 매년 공문 시행
- [실장님] 정책연구용역 예산 사용 관련 상황 점검
- [실장님]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교수님 정책연구용역 커뮤니티 가입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열람 방법
- [실장님] 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소재기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 방안 ⇨ 연수법관 부과과 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
- [처장님] 서○○ 같은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처장님] 재항고사건, 행정심판사건, 진정/민원사건
 - [실장님] 민원서류 접수 가능한지 여부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연구관실과 상의 ⇨ 소권 남용 논리 등
 - 예)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한 대법원 2014두36358 판결 등
 - 해외연수법관 수시과제 부과
 - 정책연구용역 발주
 - 사법정책연구용역
- [처장님] (6월 분기실국장 회의 지시사항) 법학전문대학원 대책 마련
- [실장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관련 피해 사례 ⇨ 대형 로펌 확인
 - 이○○, 김○○○, 박○○에게 부탁
- [실장님] 김○○ 부장님 요청사항 - 의무이행소송 관련 스토리화
- 사법발전재단 : 함○○ 부장판사님(대등재판부, 재판연구원 매뉴얼)
- [실장님] 행정심판위원회 간소화 방안

- [실장님 말씀] Assessment 활용방안 적극 검토
 - 법원장 보임에 활용 가능함
- [실장님 말씀] 전국 재판부로부터 문제 있는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
- 연임법관연수 준비
 - 김○○ 형님이 부탁하신 국내연수 관련 예산 증액 요청(조○○ 사무관님)
 - 기획총괄부장님 명의로 연수보고서 제출 독촉 메일 발송
- 공공데이터 관련 캠프 현황 파악 보고
- [실장님 말씀] 석사 과정 후기 선발 여부도 검토
- 석사과정 위탁 교육 개선 방안 마련
 - 법관 : 일반직 비율을 50:50
 - 법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석사과정 적극 발굴
 - 법관들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와 같이 근무평정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
 - 지원자가 적거나, 일반직 위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예산 불용 처리 ⇨ 예산 항목이 수
용비인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부당소송 관련 ⇨ 법원장 간담회 내용 검토 ⇨ 즉시 시행할 내용 시행착수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불필요한 회의 불참석 가능 여부) 검토
- 지금까지의 모든 이메일 확인 ⇨ 캘린더 및 업무계획표에 반영
- 시○○ 판사님 작년도 발송 이메일 전달받기

체크리스트 (2018. 7. 31.)

- 사법정책연구원 기본과제 신청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결과 보고서 활용 현황 파악
 - 부당소송 예산 집행 독려
 - 부당소송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체결 추진
 - 정책연구용역 활용 현황 파악
 - 법정언행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
 - 소통의 창 수신인 - 기획조정실장님 보고
 - 법관연수 운영협의회 논의 결과 정리 및 보고
 - 법관연수협의회(12/16) 준비
 - 기획총괄심의관님 ⇨ 시험출제위원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 사법행정위원회 코트넷 전용 소통 공간 설립 ⇨ 전정국에 협조 요청
 - 초임지법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장님 격려 오찬에 대한 개괄적인 구상 보고
 - 차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비서실장님께 구상 보고 드린 후, 구상에 대한 개괄적인 허가를 받으면 구체적인 계획 작성하여 상신
 - 인사실에 개략적인 인원 알려 달라고 부탁 (2016년, 2017년)
 - 법관연수 관련 아이디어 보고
-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과 법관연수 연계 방안
법원행정처 기본계획, 법원장회의 자료 분석 ⇨ 아이템 발굴

◆ 주요 정책 과제

- 법정언행 개선

◆ 독립 강좌 개설 여부

- 필요/ 불필요
- 독립강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법관연수 반영 방법

◆ 강좌를 추가할 연수과정

- 신입법관연수/ 경력별연수/ 재판장연수/ 재판실무연수/ 전문분야연수
- 온라인연수

◆ 법관연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책자, 연구 성과, 각종 자료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 추천강사

○ 법관연수 건의사항 취합

- 그동안 보고서에서 “법관연수”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던 내용들

○ 김○○ 실무관에게 떠나기 전에 업무인수인계 매뉴얼 만들고 떠나라고 지시

- ⇒ 기획2심의관에게 결재 받을 것

○ 정책연구용역

-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관련 안내 이메일 발송
- 교수와 법관의 공동 정책연구용역 수행 가부
- 활용 현황 파악

(151121) 차장님 지시사항

법원 커뮤니티 현황

일부 커뮤니티의

폐쇄형 커뮤니티의 발전적 해체 ⇨ 민법상 사단법인화 ⇨ 법원행정처를 감독 관청

행정판례연구회와 동일하게

재정적 지원은 각종 연구용역으로

법원 커뮤니티 전환

형사법연구회 - 형사수석부장

사법연수원LEC

검찰의 경우, 2007년도 형사소송법학회

법률 개정 국면

*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재판 실무에 접목하여 활용했는지 여부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총서 ⇨ 유용한 자료들이 많음

- 해당 실국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각종 시험 출제위원 (이○○ 부장님)

- 기획교수실에 확인하여 2015년도 시험 출제에 참여하신 강의교수님들 명단 확인
- 강의를 나갈 수 있는 교수님들의 여력 확인

○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개정해야 함

○ 정책연구용역 [처장님 지시사항]

- 수의계약 체결 가능 계약
- 교수들의 경우 실무와 유리된 현상
- 법관 커뮤니티나 사법정책연구원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151024) 김○○ 부장님, 김○○ 판사님께 질문

-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법제도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보면, 재

판중계 제도 등에 관하여 외국의 사례를 방대하게 조사하였는데,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당하였고, 어떻게 부탁하여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질문

- 법원행정처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들(홍보심의관실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현황, 공개변론이 20분 지연 송출되고 있다는 점 등)은 각 실국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였는지 질문

=====

○ 처장님 말씀 [법원 友軍 만들기 전략]

▣ 아래 사람들에 대한 명단 확보 후 사후 관리 방안(연하장 보내기, 사법논집 보내기, 법원소식지 보내기 등) 마련할 것

- 조사위원(국제실, 정책실, 지원실)
- 비법관재판연구원
-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위원
- 외교부 외무관 등

▣ 위원회, 상임조정위원, 국선전담

○ 차장님 지시사항 - 1소위 중요 법률안 보고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원님 지시사항 이행

○ 이○○ 판사님께 질문

- 이행권고결정 권한을 사법보좌관에게 이양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16402)을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하도록 임내현 의원을 접촉, 설득한 구체적 과정
- 전해철 의원이 2015. 7. 10.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16056): 당사자의 소송진술방식 개선
- 의원입법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김○○ 부장님 -> 발표비 50만 원 지급

○ [차장님] 법정언행컨설팅 개선방안 검토할 것

- 구체적으로는, 강의형 연수의 개선방안
- 차장님도 인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강의형 연수를 수강한 사실이 있음

○ [부당소송] 윤○○ 부장님

○ 법정언행 모범 동영상 배포 및 온라인 게재

○ [등기국장님] 공탁지원금 관련 대응 방안 → 사법발전재단 현황 면밀히 파악할 것

- 7/21 다시 지시

○ [등기국장님] 공탁금기금운용위원회 규칙 제정

○ [차장님] 행정심판규칙 정비

○ [처장님] 심리상담프로그램 관련 이○○ 국장 이메일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권○○ 심의관님과 상의

○ [실장님] 부당소송, 1인 시위 활성화 방안, 매뉴얼 업데이트, 홍보 ⇨ 예산 사용 관련 점검

필요

- [실장님]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건수 없으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총무과에 알리는 방안
 - 매년 공문 시행
- [실장님] 정책연구용역 예산 사용 관련 상황 점검
- [실장님]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교수님 정책연구용역 커뮤니티 가입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열람 방법
- [실장님] 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 방안 ⇨ 연수법관 부과과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
- [처장님] 서○○ 같은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처장님] 재항고사건, 행정심판사건, 진정/민원사건
 - [실장님] 민원서류 접수 가능한지 여부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연구관실과 상의 ⇨ 소권 남용 논리 등
 - 예)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한 대법원 2014두36358 판결 등
 - 해외연수법관 수시과제 부과
 - 정책연구용역 발주
 - 사법정책연구용역
- [처장님] (6월 분기실국장 회의 지시사항) 법학전문대학원 대책 마련
- [실장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관련 피해 사례 ⇨ 대형 로펌 확인
 - 이○○, 김○○○, 박○○에게 부탁
- [실장님] 김○○ 부장님 요청사항 - 의무이행소송 관련 스토리화
- 사법발전재단 : 함○○ 부장판사님(대등재판부, 재판연구원 매뉴얼)
- [실장님] 행정심판위원회 간소화 방안
- [실장님 말씀] Assessment 활용방안 적극 검토
 - 법원장 보임에 활용 가능함
- [실장님 말씀] 전국 재판부로부터 문제 있는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
- 연임법관연수 준비
 - 김○○ 형님이 부탁하신 국내연수 관련 예산 증액 요청(조○○ 사무관님)
 - 기획총괄부장님 명의로 연수보고서 제출 독촉 메일 발송
- 공공데이터 관련 캠프 현황 파악 보고
- [실장님 말씀] 석사 과정 후기 선발 여부도 검토
- 석사과정 위탁 교육 개선 방안 마련

- 법관 : 일반직 비율을 50:50
 - 법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석사과정 적극 발굴
 - 법관들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와 같이 근무평정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
 - 지원자가 적거나, 일반직 위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예산 불용 처리 ⇨ 예산 항목이 수
용비인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부당소송 관련 ⇨ 법원장 간담회 내용 검토 ⇨ 즉시 시행할 내용 시행착수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불필요한 회의 불참석 가능 여부) 검토
 - 지금까지의 모든 이메일 확인 ⇨ 캘린더 및 업무계획표에 반영
 - 시○○ 판사님 작년도 발송 이메일 전달받기

체크리스트 (2018. 7. 31.)

- 실장님 보고서 - 연가저축제 시행 방안
 - 차장님 보고서 - 위기 상황에 대응한 홍보 전략
 - 법정언행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결과 보고서 활용 현황 파악
 - 소통의 창 수신인 - 기획조정실장님 보고
 - 부당소송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체결 추진
 - 사법정책연구원 기본과제 신청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 법률안 의견 회신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사법행정위원회 코트넷 전용 소통 공간 설립 ⇨ 전정국에 협조 요청
 - 정책연구용역 활용 현황 파악
 - 법관연수 운영협의회 논의 결과 정리 및 보고
 - 기획총괄심의관님 ⇨ 시험출제위원
 - 초임지법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장님 격려 오찬에 대한 개괄적인 구상 보고
 - 차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비서실장님께 구상 보고 드린 후, 구상에 대한 개괄적인 허가를 받으면 구체적인 계획 작성하여 상신
 - 인사실에 개략적인 인원 알려 달라고 부탁 (2016년, 2017년)
 - 법관연수 관련 아이디어 보고
-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과 법관연수 연계 방안
법원행정처 기본계획, 법원장회의 자료 분석 ⇨ 아이템 발굴

◆ 주요 정책 과제
- 법정언행 개선
◆ 독립 강좌 개설 여부
- 필요/ 불필요
- 독립강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법관연수 반영 방법
◆ 강좌를 추가할 연수과정
- 신입법관연수/ 경력별연수/ 재판장연수/ 재판실무연수/ 전문분야연수
- 온라인연수

- ◆ 법관연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책자, 연구 성과, 각종 자료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 추천강사

○ 법관연수 건의사항 취합

- 그동안 보고서에서 “법관연수”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던 내용들

○ 김○○ 실무관에게 떠나기 전에 업무인수인계 매뉴얼 만들고 떠나라고 지시

- ⇒ 기획2심의관에게 결재 받을 것

○ 정책연구용역

- 교수와 법관의 공동 정책연구용역 수행 가부
- 활용 현황 파악

(151121) 차장님 지시사항

법원 커뮤니티 현황

일부 커뮤니티의

폐쇄형 커뮤니티의 발전적 해체 ⇨ 민법상 사단법인화 ⇨ 법원행정처를 감독 관청

행정판례연구회와 동일하게

재정적 지원은 각종 연구용역으로

법원 커뮤니티 전환

형사법연구회 - 형사수석부장

사법연수원LEC

검찰의 경우, 2007년도 형사소송법학회

법률 개정 국면

*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재판 실무에 접목하여 활용했는지 여부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총서 ⇨ 유용한 자료들이 많음

- 해당 실국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 각종 시험 출제위원 (이○○ 부장님)

- 기획교수실에 확인하여 2015년도 시험 출제에 참여하신 강의교수님들 명단 확인
- 강의를 나갈 수 있는 교수님들의 여력 확인

=====

○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개정해야 함

○ 정책연구용역 [처장님 지시사항]

- 수의계약 체결 가능 계약
- 교수들의 경우 실무와 유리된 현상
- 법관 커뮤니티나 사법정책연구원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151024) 김○○ 부장님, 김○○ 판사님께 질문

-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법제도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보면, 재판중계 제도 등에 관하여 외국의 사례를 방대하게 조사하였는데,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당하였고, 어떻게 부탁하여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질문
- 법원행정처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들(홍보심의관실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현황, 공개변론이 20분 지연 송출되고 있다는 점 등)은 각 실국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였는지 질문

=====

○ 처장님 말씀 [법원 友軍 만들기 전략]

▣ 아래 사람들에 대한 명단 확보 후 사후 관리 방안(연하장 보내기, 사법논집 보내기, 법원소식지 보내기 등) 마련할 것

- 조사위원(국제실, 정책실, 지원실)
- 비법관재판연구원
-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위원
- 외교부 외무관 등

▣ 위원회, 상임조정위원, 국선전담

○ 차장님 지시사항 - 1소위 중요 법률안 보고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원님 지시사항 이행

○ 이○○ 판사님께 질문

- 이행권고결정 권한을 사법보좌관에게 이양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16402)을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하도록 임내현 의원을 접촉, 설득한 구체적 과정
- 전채철 의원이 2015. 7. 10.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16056): 당사자의 소송진술방식 개선
- 의원입법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김○○ 부장님 -> 발표비 50만 원 지급

○ [차장님] 법정언행컨설팅 개선방안 검토할 것

- 구체적으로는, 강의형 연수의 개선방안
- 차장님도 인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강의형 연수를 수강한 사실이 있음

○ [부당소송] 윤○○ 부장님

○ 법정언행 모범 동영상 온라인 게재

○ [등기국장님] 공탁지원금 관련 대응 방안 → 사법발전재단 현황 면밀히 파악할 것

- 7/21 다시 지시

○ [등기국장님] 공탁금기금운용위원회 규칙 제정

○ [차장님] 행정심판규칙 정비

○ [처장님] 심리상담프로그램 관련 이○○ 국장 이메일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권○○ 심의관님과 상의

- [실장님] 부당소송, 1인 시위 활성화 방안, 매뉴얼 업데이트, 홍보 ⇨ 예산 사용 관련 점검 필요
- [실장님]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건수 없으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총무과에 알리는 방안
 - 매년 공문 시행
- [실장님] 정책연구용역 예산 사용 관련 상황 점검
- [실장님]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교수님 정책연구용역 커뮤니티 가입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열람 방법
- [실장님] 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 방안 ⇨ 연수법관 부과과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

- [처장님] 서○○ 같은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처장님] 재항고사건, 행정심판사건, 진정/민원사건
 - [실장님] 민원서류 접수 가능한지 여부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연구관실과 상의 ⇨ 소권 남용 논리 등
 - 예)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한 대법원 2014두36358 판결 등
 - 해외연수법관 수시과제 부과
 - 정책연구용역 발주
 - 사법정책연구용역

- [실장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관련 피해 사례 ⇨ 대형 로펌 확인
 - 이○○, 김○○○, 박○○에게 부탁
- [실장님] 김○○ 부장님 요청사항 - 의무이행소송 관련 스토리화
- 사법발전재단 : 함○○ 부장판사님(대등재판부, 재판연구원 매뉴얼)
- [실장님] 행정심판위원회 간소화 방안
- [실장님 말씀] 법관연수 관련 Assessment 활용방안 적극 검토
 - 법원장 보임에 활용 가능함
- [실장님 말씀] 전국 재판부로부터 문제 있는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
- 연임법관연수 준비
 - 김○○ 형님이 부탁하신 국내연수 관련 예산 증액 요청 (조○○ 사무관님)
 - 기획총괄부장님 명의로 연수보고서 제출 독촉 메일 발송
- 공공데이터 관련 캠프 현황 파악 보고
- 석사과정 위탁 교육 개선 방안 마련
 - 법관 : 일반직 비율을 50:50
 - 법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석사과정 적극 발굴

- 법관들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와 같이 근무평정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
- 지원자가 적거나, 일반직 위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예산 불용 처리 ⇨ 예산 항목이 수
용비인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실장님 말씀] 석사 과정 후기 선발 여부도 검토
- 부당소송 관련 ⇨ 법원장 간담회 내용 검토 ⇨ 즉시 시행할 내용 시행착수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 검토
 - 불필요한 회의 불참 가능 여부
- 지금까지의 모든 이메일 확인 ⇨ 캘린더 및 업무계획표에 반영
- 시○○ 판사님 작년도 발송 이메일 전달받기

체크리스트 (2018. 7. 31.)

- 박○○ 대법관님 주재 심의관 송년회 장소 확정
 - 11. 28.(월) 보고 목표
 - 송년회 12. 6.(화) ⇨ 1주 전인 11. 29.(화)까지는 보고 완료
- 근무평정 입력
- 법원장회의 기본계획 결재 완료
- 토의 자료 보고 ⇨ 법원장 커뮤니티 게시
 - 처장님, 차장님, 실장님들께 스프링 제본하여 제공
- 처장님 군부대 및 광주법원 방문 수행자 범위 ⇨ 기조실장님 보고
- 11/30 법사위 대비 예상질의답변 ⇨ 11/28(월) 늦은 밤까지 취합
 - 현안 정리
 - 지원실에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이 있으면 예상질의답변에 추가
- 2016년도 업무계획은 저녁에 작성
- 2016년도 업무계획 책자 완성 보고
- 법관 윤리 제고 및 윤리감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정리
- 전국 법원 순회 간담회 결과 취합 보고
 - 전국 법원장 순회 간담회 논의 결과도 함께 종합하여 보고
- 각급 법원 실무연구회,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지원
- 기조실장님
 - 부산가정법원 부부, 청소년 상담아카데미 개선을 위한 예산재배정 요청서
 - 재판실무연구회 사례비 지급 방안 검토 (강○○ 법원장님)
 - 청주지방법원(?) 건의사항 검토
- **대법원장님 퇴임 기념 논문집 TF 구성**
 - [1단계] 법원장님 재임 기념 사업 추진
 - [2단계] 대법원장님 임기 중 중점추진사업 선정
 - 대법원장님께서 지난 5년간 추진하셨던 업적 정리
- 처장님 주재 송년회 장소 확정

- 12. 5.(월) 보고 목표
- 송년회 일자 12. 23.(금) ⇨ 2주 전인 12. 9.(금)까지는 보고 완료

○ 김○○ 과장에게 개헌 관련 자료 보내기

○ 개헌대응반 업무분장 등

○ 정년 퇴직 및 재판연구원 증원 법안 검토 및 발의

- 재판연구원 정원 조정 관련 아이디어
 - 법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한법협/ 청년변호사회
 - 재판연구원은 고등법원 대등재판부 부장판사, 단독재판부 부장판사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함이 타당
 - [부장판사 이상 법관 수: 723명]
 - 합의부장: 358명, 단독부장: 186명, 단독 1/2 14명, 비재판보직 52명, 고법판사 113명
 - 2017년 2월, 2017년 5월

○ 박○○ 부장님 출산 축하 선물

○ 법조봉사대상 시상식

○ 대국민설문조사 검토 (이○○)

○ [차장님, 실장님]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방안

- 홍보조직 개편 논의 포함
- 인력, 조직 진단
- 법원행정처 발전 방향 ⇨ 주요 사법 과제 추출
- 의제설정기능
- 법원행정처 개편
 - 각 심의관 ⇨ 타임 시트 작성 필요 (로펌의 타임 시트 작성 노하우 공유)
 - 각 실국별 자료 공유 필요 ⇨ 보고서 등록 시스템 도입
 - 자료 보존 필요 ⇨ 보고서 등록 시스템 도입
- 조직개편 - 직원 증원
 - [윤리감사관실] 1실 사무관 1명, 실무관 1명, 2실 행정관 1명
 - 조직심의관, 인력운영심의관

○ [차장님] 내부 정보 취합 보고 방안, 예방적 감찰 활동 강화

- 각급 법원 풍문, 첩보 수집 방안
 - 각급 법원 정보 취합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점검

- **[소관] 기획조정실**

- 중요한 것은 정보, 첩보 수집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 사항 추출 ⇨ 반드시 윤리감사관실에서 해야할 논리 필연성은 없음
- 사법행정라인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예방적 감찰 활동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
- 정보, 첩보 수집 후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들은 윤리감사관실로 전달해주는 방식이 적절
- 반대의 경우, 윤리감사관실 특유의 비밀성, 폐쇄성으로 행정처 전체 차원의 기민한 대응이 어려움
 -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큰 문제
 - 역으로, 공유해야 할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임 ⇨ 기초실은 모든 정보를 취합하되, 보안 유지에 책임을 지고, 역으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함
 - 1) 기초실은 공유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조치를 해야 함 ⇨ 윤감실은 개별적 징계 조치만을 할 수 있을 뿐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음 ⇨ 정보 취합 및 취합된 정보의 가공,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출해 낸 후 추진해야 할 각종 정책들을 행정처 내 각 실국에 분배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의 고유의 업무임
 - 2) 기초실이 행사 주관, 자료 취합, 의전 등의 업무만 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임 ⇨ 정책실, 윤감실에는 이와 같은 관점이 존재함
 - 3) 윤감실에서 각종 정보를 기초실에 주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임
- 정보 수집 방법
 - 행정처 심의관들 사이의 정보 공유: 각종 TF 뒤풀이 등을 통해 들은 정보 공유
 - 법원문화연구반 자료는 기초실에서 검토해야 함
- 고충법관제도
- 익명카페, 여성법관커뮤니티
- 코트넷 커뮤니티 동향 보고(주간 보고)
- 기획법관 보고 ⇨ 주간보고로 전환

○ **분기실국장회의 날짜 확정 필요**

○ **김○○ 대법관님 행정사항 안내**

- **대통령 탄핵 절차 검토** ⇨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 가부**
 - 김○○ 교수 논문 읽기
 - 탄핵과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 가부
- **특검법 관련 쟁점 검토**
 - 특검법 관련 논문 읽기
- **최○○ 사건 관련 쟁점 검토**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진행 상황 점검
- **권○○ 판사 - 대법원 자문위원회 관련 메일 내용 검토**
- **김○○ 대법관님 행정사항 안내**
- **국제심의관, 문○○ 심의관 요청사항** ⇨ **대법원 규칙 개정**
- **국회입법추진계획 보완**
 - (차장님 지시) 국회입법추진계획 파란색으로 표시 & 업데이트 & 구간 표시
- **사법신뢰개선방안**
 - 이행 여부 점검

- **점심식사**
 - 김○○ 민사과장님
 - 김○○ 사무관님
- **재판연구원 간담회 개최 여부**
 - 2015. 11. 10. 서울고등 권역, 2015. 11. 12. 대전고등 권역 실시
 - 재판연구원 간담회 2015년 실시 ⇨ 2016년 실시 여부
- **2017년 2월 초 신임법원장간담회 개최**
 - 2017년 기관장 업무편람 발간
 - 1박 2일로 추진
- **대법관 행정회의**
- **기획법관 제도 개선 방안**
 - 검찰에서 기획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기획2에게 과제 부과
- **함진규 의원님**
 - 시흥시법원
- **[10/19] 여상규 의원실 고○○ 보좌관님 요청사항**
 - 예산증액 필요 항목
- **국정감사 회의장 언론사 취재 지원 관련 개선 사항 검토**
 - 홍보심의관이 항의한 내용 관련
 - 수감계획서나 매뉴얼에 반영할 내용이 무엇인지
 - 앞으로 기조실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홍보심의관실의 취재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확인하는 프로세스 구축해야 함
 - 기조실 사무관은 홍보심의관실 사무관하고도 연락해야 함
- **대외기관 자료 제출 업무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점검**
 - 기획제1심의관(중요)과 기획조정심의관(일상적인 것)의 업무 분장 점검
- **약식명령 관련 인권위 이행권고결정문 - 처장님 수신인**
 - 사법지원실에 진행 상황 확인
- **국정감사 결과 정리**
 - 각급 법원 예상질의답변 취합 ⇨ 사법행정커뮤니티에 게시
 - 수감 계획 작성 관련 공보관실과 사전 협의 필요 (공보관님, 홍보심의관님과)

전화)

○ **홍보조직 개편**

- 인사운영심의관 공문 ☞ 직원들의 임용 전 경력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기조실장님 지시] 도산법원 신설 관련**

- 박○○ 판사에게 전달 ⇨ 도산법원 신설될 경우 시설, 예산 추가 소요가 있는지 여부 검토
- 예산담당관(예산), 조직심의관(정원, 인력), 시설담당관(시설)

○ **김○○ 부장님**

- 김영란법 적용 여부
- 점심식사 일정 확정

○ **각급 법원 TF 현황 파악**

- 박○○ 판사

○ **판사회의, 사법행정위원회, 윤리심의위원회 발족**

○ **입법추진과제 점검 ⇨ 입법추진계획 업데이트**

○ **규칙 개정**

○ **김○○ 보좌관님 - 정○○ 부장님과 저녁식사**

○ **처장님 - 법사위원 분석**

○ **박○○ 부장님**

-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안내메일 정정

○ **최○○ 제안**

- 지방지 칼럼에 실리는 칼럼의 경우 각급 법원공보관이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 확립

○ **정갑윤 의원실 전○○ 비서**

- 예산 설명회 개최

○ **박주민 의원 ⇨ 언론스크랩 제공 가부**

○ **이○○ 대법관님 - 대법관회의 회의록 작성 필요**

○ **김영란법**

- 법률 및 시행령 1회독
- 헌법재판소 결정문 1회독
- 윤감실에서 자료 받아서 1회독
- 이○○ 지원장님께 연락
- 무죄 판결 주문 변경
-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대응
 - 김○○ 판사와 유기적 연락 체계 구축
- 법원행정처 전체 행사 취합, 보고 체계 확립
 - 박○○ 사무관님 ⇨ 매주 행사계획 취합 ⇨ 공보관실 전달
 - 기획1심의관 보고
 - 주간보고, 일일보고 ⇨ 카카오톡도 확인
- 영남권 법원 순회간담회
 - 법원장님 프로필 보고
 - 각급 법원 현황 보고
 - 처장님 말씀 자료
 - 자료집
 - 드레스 코드, 간식 준비 필요
 - 대전 권역 간담회는 자리가 비좁았음
- 분기실국장회의 관련 처장님 지시사항 기초실 배부, 보고 여부 점검
- 청문회 노하우, 개선 사항 정리
 - 8. 22.(월)부터 정리
- 법사위 위원 성향 분석 ⇨ 국정감사 前 보고 필요
 - 지역구 ⇨ 지역구 현안, 지역구 내 법원 신설 요구 등, 지역구 관련 소송
 - 출생지 ⇨ 출생지 관련 현안
 - 선거재판 기타 소송 계속 현황
 - 대표 발의 법률안
 - 국정감사 발언 내용 분석
 - 국회 발언 내용 정리 ⇨ 회의록 분석
 - 법사위원별 질의사항 정리
 - 전체회의에서 질의한 내용 순서대로 정리
 - 법사위원별 관심 사항 파악 ⇨ 위원별로 2~3쪽으로 정리

- 프로필, 컨택포인트, 친분 있는 법관, 가족관계, 교우관계
- 언론보도 분석, 운영 블로그 등 분석
- 출판기념회 내용, 발간 책자, 자서전 등 분석
- 법안발의 내역, 자료제출 요구 내역
- 선거범죄 기소, 재판 현황
- 기타 재판 등 계속 현황
- 보좌관, 비서관에게 문의

○ 국회의원 성향 분석

- 지역구 ⇨ 지역구 현안, 지역구 내 법원 신설 요구 등, 지역구 관련 소송
- 출생지 ⇨ 출생지 관련 현안
- 선거재판 기타 소송 계속 현황
- 대표 발의 법률안
- 국회 발언 내용 정리 ⇨ 회의록 분석

○ 정○○ 행정관님 등 기획1실, 국회팀 컴퓨터 하드의 업무 관련 자료 복사

- 대용량 하드 디스크에 담아달라고 부탁

○ [차장님] 검찰개혁 논의 상황 정리 보고

- 더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 검찰개혁 논의가 사법부에 미칠 영향

○ 회생법원 추진

- 인원, 비용 추계, 경제 6단체와의 연계 방안

○ [차장님] 고○○ 교수님 관련 자료 보고

○ [차장님] 4차 산업혁명 관련 보고

○ [차장님] 사무분담 기준 변경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

- 해외연수 법관에 과제 부과

○ [차장님] 사법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종료 후 반응과 향후 전망

○ 판사회의 대응 논리

- 사법행정위원회와의 관계 더욱 정치하게 정리

○ [차장님]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 (국회 속기록)

○ **[처장님] 김진태 의원의 국회 발언 내용**

- 김진태 의원에 대한 동향 분석 필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국회 토론회**

- 자료집 확보

○ **[아이디어] 행정소송 관할 확대, 헌법소원 폐지**

○ **[실장님] 개헌 가능의식 2/3 도달 여부 점검**

○ **[처장님] 각급 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더민주당 공약 관련 확인**

○ **각급 법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대법원장님 업무보고,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사법연수원] 경력별연수 불참 사유서 송부 (이○○ 교수에게 확인)**

○ **[사법정책연구원] 성희룡 내규 대법원장님 승인 관련 처리**

○ **법원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당선 축하 만찬 여부**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의견**

-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의견 개선 방안 검토

- 발렛파킹 서비스 문제와 함께 검토

○ **국회 요구자료 목록 점검**

-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 배경은 무엇인지 항상 확인해야 함

○ **엑스폴더 등 자료 관리 시스템**

- 임○○,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체계적인 자료 보관,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

▪ 과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함

▪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 시스템 벤치마킹 필요

○ **사법부의 핵심 과제**

- 법관 업무량 경감

체크리스트 (2018. 7. 31.)

- 기관장 업무 편람
- 신임 법원장 간담회 준비
- 행정처 TF 현황
- 전문분야연구회 등 예산 배정
 - 2016년 하반기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배정
 - 회원 수, 활동 내역 등 평가 ⇨ 15개 연구회에 55,000,000원 배정
- 전국 법원 순회 간담회 결과 취합 보고
 - 전국 법원장 순회 간담회 논의 결과도 함께 종합하여 보고
- 법원행정처장 광주고등법원, 지방법원 방문 📄 결과 보고
- 대법원장님 퇴임 기념 논문집 TF 구성
 - [1단계] 법원장님 재임 기념 사업 추진
 - [2단계] 대법원장님 임기 중 중점추진사업 선정
 - 대법원장님께서 지난 5년간 추진하셨던 업적 정리
- 개헌대응반(12. 20. 화) 회의 준비
- 2016년 주요 업무계획
 - [법원행정처] 12. 5.(월), 12. 12.(월) 주례실국장회의, 12. 8.(목) 부장회의
 - [각급법원] 12. 12.(월) 각급 법원에 송부 요청 공문 시행
- 정년 퇴직 및 재판연구원 증원 법안 검토 및 발의
 - 재판연구원 정원 조정 관련 아이디어
 - 법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한법협/ 청년변호사회
 - 재판연구원은 고등법원 대등재판부 부장판사, 단독재판부 부장판사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함이 타당
 - [부장판사 이상 법관 수: 723명]
 - 합의부장: 358명, 단독부장: 186명, 단독 1/2 14명, 비재판보직 52명, 고법판사 113명
 - 2017년 2월, 2017년 5월
- 처장님 연하장 명단 정리

- 2017년 주요 업무 집행 결과
- 법관윤리제고방안 ☞ 코트넷 공지
 - 법원장회의 종료 후 추진 계획 보고 ☞ 코트넷 공지
 -
- 개헌대응반 업무분장 등
- 4분기 실국장회의
 -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2017년 대법원 주요 정책 및 입법 추진 과제)
 - 2015. 12. 29. ☞ 2016. 1. 8.로 변경

- **2017년 전국 법원장 간담회, 수석부장회의**
 - 일정 확정 ☞ 법원장 간담회 장소 선정 검토
 - [이○○ 수석부장님] 2017년 수석부장회의 날짜 결정 필요
- **신년사, 시무식**
 - 대법원장님 신년사
 - 처장님 시무식사
 - 각급 법원 시무식 현황 점검
- **기조실장님**
 - 부산가정법원 부부, 청소년 상담아카데미 개설을 위한 예산재배정 요청서
 - 재판실무연구회 사례비 지급 방안 검토 (강○○ 법원장님)
 - 청주지방법원(?) 건의사항 검토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내부 연구진행상황 점검**
 - (최○○) 판결 정보의 공개 및 이용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법조봉사대상 시상식**
- **대국민설문조사 검토 (이○○)**
- **기관장 업무 편람**
 - 종전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배부
 - 사법행정에 관한 워크숍에서 배부
 - 기관장 업무 편람 발간을 위한 TF 구성
 - 신임법원장 간담회와 연동
 - 예산 업무, 시설 업무
 - 신임 법원장 인사 발령 일자, 예상 인원 정도 파악
- **2017년 상반기 전문분야연구회예산배정**
 - 각 연구회 실적보고서 취합
- **2016년 각급 법원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정리**
 - 정책 추진에 반영할만한 모범사례 추출, 정리 ⇨ 행정처 및 각급 법원 공유
- **2017년 사법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 작성**
- **사법연수원 법원장 연수 준비(사법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
- **2017년 신임 법원장 간담회 준비**

- [전례] 2016. 2. 3.(수) 오후 4시 실시

○ **2017년 지원장 연수**

○ **2015년 주요 업무 집행 결과**

- 법원행정처 각 실국에 송부 요청 공문 시행
- 각급 법원에 송부

○ **[차장님, 실장님]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방안**

- 홍보조직 개편 논의 포함
- 인력, 조직 진단
- 법원행정처 발전 방향 ⇨ 주요 사법 과제 추출
- 의제설정기능
- 법원행정처 개편
 - 각 심의관 ⇨ 타임 시트 작성 필요 (로펌의 타임 시트 작성 노하우 공유)
 - 각 실국별 자료 공유 필요 ⇨ 보고서 등록 시스템 도입
 - 자료 보존 필요 ⇨ 보고서 등록 시스템 도입
- 조직개편 - 직원 증원
 - [윤리감사관실] 1실 사무관 1명, 실무관 1명, 2실 행정관 1명
 - 조직심의관, 인력운영심의관

○ **[차장님] 내부 정보 취합 보고 방안, 예방적 감찰 활동 강화**

- 각급 법원 풍문, 첩보 수집 방안
 - 각급 법원 정보 취합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점검

- **[소관] 기획조정실**

- 중요한 것은 정보, 첩보 수집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 사항 추출 ⇨ 반드시 윤리감사관실에서 해야할 논리 필연성은 없음
- 사법행정라인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예방적 감찰 활동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
- 정보, 첩보 수집 후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들은 윤리감사관실로 전달해주는 방식이 적절
- 반대의 경우, 윤리감사관실 특유의 비밀성, 폐쇄성으로 행정처 전체 차원의 기민한 대응이 어려움
 -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큰 문제
 - 역으로, 공유해야 할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임 ⇨ 기초실은 모든 정보를 취합하되, 보안 유지에 책임을 지고, 역으로 정보 공유가 제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함

- 1) 기초실은 공유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조치를 해야 함 ⇨ 윤감실은 개별적 징계 조치만을 할 수 있을 뿐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음 ⇨ 정보 취합 및 취합된 정보의 가공,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출해 낸 후 추진해야 할 각종 정책들을 행정처 내 각 실국에 분배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의 고유의 업무임
 - 2) 기초실이 행사 주관, 자료 취합, 의전 등의 업무만 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임 ⇨ 정책실, 윤감실에는 이와 같은 관점이 존재함
 - 3) 윤감실에서 각종 정보를 기초실에 주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임
- 정보 수집 방법
 - 행정처 심의관들 사이의 정보 공유: 각종 TF 뒤풀이 등을 통해 들은 정보 공유
 - 법원문화연구반 자료는 기초실에서 검토해야 함
 - 고충법관제도
 - 익명카페, 여성법관커뮤니티
 - 코트넷 커뮤니티 동향 보고(주간 보고)
 - 기획법관 보고 ⇨ 주간보고로 전환

○ 김○○ 대법관님 행정사항 안내

- **대통령 탄핵 절차 검토** ⇨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 가부**
 - 김○○ 교수 논문 읽기
 - 탄핵과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 가부
- **특검법 관련 쟁점 검토**
 - 특검법 관련 논문 읽기
- **최순실 사건 관련 쟁점 검토**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진행 상황 점검
- **권○○ 판사 - 대법원 자문위원회 관련 메일 내용 검토**
- **김○○ 대법관님 행정사항 안내**
- **국제심의관, 문○○ 심의관 요청사항** ⇨ **대법원 규칙 개정**
- **국회입법추진계획 보완**
 - (차장님 지시) 국회입법추진계획 파란색으로 표시 & 업데이트 & 구간 표시
- **사법신뢰개선방안**
 - 이행 여부 점검

○ **점심식사**

- 김○○ 민사과장님
- 김○○ 사무관님

○ **재판연구원 간담회 개최 여부**

- 2015. 11. 10. 서울고등 권역, 2015. 11. 12. 대전고등 권역 실시
- 재판연구원 간담회 2015년 실시 ⇨ 2016년 실시 여부

○ **2017년 2월 초 신임법원장간담회 개최**

- 2017년 기관장 업무편람 발간
- 1박 2일로 추진

○ **기획법관 제도 개선 방안**

- 검찰에서 기획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기획2에게 과제 부과

○ **함진규 의원님**

- 시흥시법원

○ **국정감사 회의장 언론사 취재 지원 관련 개선 사항 검토**

- 홍보심의관이 항의한 내용 관련
- 수감계획서나 매뉴얼에 반영할 내용이 무엇인지
- 앞으로 기조실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홍보심의관실의 취재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확인하는 프로세스 구축해야 함
- 기조실 사무관은 홍보심의관실 사무관하고도 연락해야 함

○ **대외기관 자료 제출 업무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점검**

- 기획제1심의관(중요)과 기획조정심의관(일상적인 것)의 업무 분장 점검

○ **약식명령 관련 인권위 이행권고결정문 - 처장님 수신인**

- 사법지원실에 진행 상황 확인

○ **국정감사 결과 정리**

- 각급 법원 예상질의답변 취합 ⇨ 사법행정커뮤니티에 게시
- 수감 계획 작성 관련 공보관실과 사전 협의 필요 (공보관님, 홍보심의관님과 전화)

○ **홍보조직 개편**

- 인사운영심의관 공문 ⇨ 직원들의 임용 전 경력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기조실장님 지시] 도산법원 신설 관련**
 - 박○○ 판사에게 전달 ⇨ 도산법원 신설될 경우 시설, 예산 추가 소요가 있는지 여부 검토
 - 예산담당관(예산), 조직심의관(정원, 인력), 시설담당관(시설)
- **김○○ 부장님**
 - 김영란법 적용 여부
 - 점심식사 일정 확정
- **각급 법원 TF 현황 파악**
 - 박○○ 판사
- **판사회의, 사법행정위원회, 윤리심의위원회 발족**
- **입법추진과제 점검 ⇨ 입법추진계획 업데이트**
- **규칙 개정**
- **김○○ 보좌관님 - 정○○ 부장님과 저녁식사**
- **처장님 - 법사위원 분석**
- **박○○ 부장님**
 -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안내메일 정정
- **최○○ 제안**
 - 지방지 칼럼에 실리는 칼럼의 경우 각급 법원공보관이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 확립
- **정갑윤 의원실 전○○ 비서**
 - 예산 설명회 개최
- **박주민 의원 ⇨ 언론스크랩 제공 가부**
- **이○○ 대법관님 - 대법관회의 회의록 작성 필요**
- **김영란법**
 - 법률 및 시행령 1회독
 - 헌법재판소 결정문 1회독
 - 윤감실에서 자료 받아서 1회독
- **이○○ 지원장님께 연락**

- 무죄 판결 주문 변경
-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대응
 - 김○○ 판사와 유기적 연락 체계 구축
- 법원행정처 전체 행사 취합, 보고 체계 확립
 - 박○○ 사무관님 ⇨ 매주 행사계획 취합 ⇨ 공보관실 전달
 - 기획1심의관 보고
 - 주간보고, 일일보고 ⇨ 카카오톡도 확인
- 영남권 법원 순회간담회
 - 법원장님 프로필 보고
 - 각급 법원 현황 보고
 - 처장님 말씀 자료
 - 자료집
 - 드레스 코드, 간식 준비 필요
 - 대전 권역 간담회는 자리가 비좁았음
- 분기실국장회의 관련 처장님 지시사항 기초실 배부, 보고 여부 점검
- 청문회 노하우, 개선 사항 정리
 - 8. 22.(월)부터 정리
- 법사위 위원 성향 분석 ⇨ 국정감사 前 보고 필요
 - 지역구 ⇨ 지역구 현안, 지역구 내 법원 신설 요구 등, 지역구 관련 소송
 - 출생지 ⇨ 출생지 관련 현안
 - 선거재판 기타 소송 계속 현황
 - 대표 발의 법률안
 - 국정감사 발언 내용 분석
 - 국회 발언 내용 정리 ⇨ 회의록 분석
 - 법사위원별 질의사항 정리
 - 전체회의에서 질의한 내용 순서대로 정리
 - 법사위원별 관심 사항 파악 ⇨ 위원별로 2~3쪽으로 정리
 - 프로필, 컨택포인트, 친분 있는 법관, 가족관계, 교우관계
 - 언론보도 분석, 운영 블로그 등 분석
 - 출판기념회 내용, 발간 책자, 자서전 등 분석
 - 법안발의 내역, 자료제출 요구 내역

- 선거범죄 기소, 재판 현황
- 기타 재판 등 계속 현황
- 보좌관, 비서관에게 문의

○ 국회의원 성향 분석

- 지역구 ⇨ 지역구 현안, 지역구 내 법원 신설 요구 등, 지역구 관련 소송
- 출생지 ⇨ 출생지 관련 현안
- 선거재판 기타 소송 계속 현황
- 대표 발의 법률안
- 국회 발언 내용 정리 ⇨ 회의록 분석

○ 정○○ 행정관님 등 기획1실, 국회팀 컴퓨터 하드의 업무 관련 자료 복사

- 대용량 하드 디스크에 담아달라고 부탁

○ [처장님] 검찰개혁 논의 상황 정리 보고

- 더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 검찰개혁 논의가 사법부에 미칠 영향

○ [차장님] 고○○ 교수님 관련 자료 보고

○ [차장님] 4차 산업혁명 관련 보고

○ [차장님] 사무분담 기준 변경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

- 해외연수 법관에 과제 부과

○ [차장님] 사법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종료 후 반응과 향후 전망

○ 판사회의 대응 논리

- 사법행정위원회와의 관계 더욱 정치하게 정리

○ [처장님]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 (국회 속기록)

○ [처장님] 김진태 의원의 국회 발언 내용

- 김진태 의원에 대한 동향 분석 필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국회 토론회

- 자료집 확보

○ [아이디어] 행정소송 관할 확대, 헌법소원 폐지

○ **[처장님] 각급 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더민주당 공약 관련 확인**

○ **각급 법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대법원장님 업무보고,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의전**

-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의전 개선 방안 검토
- 발렛파킹 서비스 문제와 함께 검토

○ **국회 요구자료 목록 점검**

-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 배경은 무엇인지 항상 확인해야 함

○ **엑스폴더 등 자료 관리 시스템**

- 임○○,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체계적인 자료 보관,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
 - 과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함
 -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 시스템 벤치마킹 필요

○ **사법부의 핵심 과제**

- 법관 업무량 경감
 - 법관 증원, 재판 보조 인력 증원(로클럭 증원, 참여관 감원), 부판사/간이 판사 제도 신설, 사법보좌관 인력 증원, 사법보좌관 제도의 재편성
 - 참여관의 역할 강화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아야 함
 - 법관 증원보다는 재판연구원 증원을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함 ⇨ 법관 증원은 법관 위상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
 - ①단계 재판연구원 증원 ⇨ ②단계 법관 증원
- 법관 근무지 안정
 - 사무분담 장기화/특정법원근무기간 장기화, 지방 근무 회수 최소화
- 부장판사에 대한 대우
 - Seniority의 개념 ⇨ 부장판사에 대한 예우는 불가피
 - 향후 완전한 법조일원화(10년 경력)가 되기 전까지는 부장판사 개념 유지 필요 ⇨ 10년 경력 이상 법관으로만 구성되는 체제가 된다면 부장판사 개

- 넘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임
- 합의부 부장판사는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 ⇨ (관점의 전환) 로클럭 배정
 - 과거에도 단독부장에게는 예비판사 배정한 선례 존재
 - 전체 부장판사 중 단독 부장판사의 수 산출
 - 최근 5년간 단독부장판사의 수 산출
 - 부장판사 개념의 전환 ⇨ 합의부 재판장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 **“단독재판장 이상 + 독방 + 로클럭”**
- 법관에 대한 예우 강화
 - 법관들은 모두 1인 1실 사용
 - 사무국장과 법관 사이의 의전 서열 확립
 - 4)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의원 사이의 의전 서열과 유사
 - 법관에 대한 복지 아이템
 - 가상 인터넷 PC 지급
 - 심급구조 재설계
 - 간이사건 형식적 4심화, 실질적 3심제 (간이재판소 ⇨ 1심 법원 ⇨ 항소 법원)
 - 항소심의 사후심화
 - **고등법원을 사실상 상고법원처럼 운영 ⇨ 전제조건은 간이재판소(구법원) 및 부판사 신설**
 - 대법원 심리범위의 대폭 축소
 - 평생법관제 정착
 - 원로법관 제도 도입

체크리스트 (2018. 7. 31.)

- 차장님 ⇨ 2. 1. 재판연구원 강의 자료
- 권○○ 대법관님 각급 법원 방문 계획
- 법원행정처장 광주고등법원, 지방법원 방문 📄 결과 보고
- 전국 법원 순회 간담회 결과 취합 보고
 - 전국 법원장 순회 간담회 논의 결과도 함께 종합하여 보고
- 개헌대응반 관련 주제 정리 배분
- 기관장 업무 편람 발간을 위한 공문 발송
 - 종전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배부
 - 사법행정예 관한 워크숍에서 배부
 - 기관장 업무 편람 발간을 위한 TF 구성
 - 신임법원장 간담회와 연동: 예산 업무, 시설 업무
 - 신임 법원장 인사 발령 일자, 예상 인원 정도 파악
- 사법행정발전을 위한 세미나 ⇨ 각 실국별로 의견 취합
 - 기조실장님 강의 자료 ⇨ 전체 실국 취합(특히, 예산, 조직, 시설 등)
- 신임 법원장 간담회 기본계획 수립
- 국제법률심포지엄 주제 선정
- 2017년 주요 업무 계획
 - 각급 법원 공문 시행
 - 법원행정처 주요 업무 계획 인쇄 의뢰
- 전문분야연구회 2017년 운영 방향 및 예산 배정 방안
- [기조실장님] 행정처 TF 현황
- [차장님, 실장님]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방안
 - 홍보조직 개편 논의 포함
 - 인력, 조직 진단
 - 법원행정처 발전 방향 ⇨ 주요 사법 과제 추출
 - 의제설정기능
 - 법원행정처 개편

- 각 심의관 ☞ 타임 시트 작성 필요 (로펌의 타임 시트 작성 노하우 공유)
- 각 실국별 자료 공유 필요 ☞ 보고서 등록 시스템 도입
- 자료 보존 필요 ☞ 보고서 등록 시스템 도입
- 조직개편 - 직원 증원
 - [윤리감사관실] 1실 사무관 1명, 실무관 1명, 2실 행정관 1명
 - 조직심의관, 인력운영심의관

○ **분기실국장회의** ⇨ **1. 24.**

- 분기실국장회의 관련 처장님 기초실 관련 지시사항 이행 여부 점검

○ **백서 발간 TF**

- 예산 관련 검토
- 사법발전계획, 사법의 현황과 전망 책자 등 파일 업로드
- 대법원장님 임기 중 중점추진사업 선정
 - 대법원장님께서 지난 5년간 추진하셨던 업적 정리

- 대법관님 행정사항 안내 ⇨ 2017년 개정판
- 사법신뢰개선방안
 - 이행 여부 점검
- 이○○ 대법관님 퇴임 관련 안내 자료
- 기조실장님
 - 부산가정법원 부부, 청소년 상담아카데미 개선을 위한 예산재배정 요청서
 - 재판실무연구회 사례비 지급 방안 검토 (강○○ 법원장님)
 - 청주지방법원(?) 건의사항 검토

○ 개헌 정국 분석 보고서

○ [차장님] 내부 정보 취합 보고 방안, 예방적 감찰 활동 강화

- 각급 법원 풍문, 첩보 수집 방안
 - 각급 법원 정보 취합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점검
- [소관] 기획조정실
- 중요한 것은 정보, 첩보 수집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 사항 추출 ⇨ 반드시 윤리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논리 필연성은 없음
- 사법행정라인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예방적 감찰 활동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
- 정보, 첩보 수집 후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들은 윤리감사관실로 전달해주는 방식이 적절
- 반대의 경우, 윤리감사관실 특유의 비밀성, 폐쇄성으로 행정처 전체 차원의 기민한 대응이 어려움
 -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큰 문제
 - 역으로, 공유해야 할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임 ⇨ 기초실은 모든 정보를 취합하되, 보안 유지에 책임을 지고, 역으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함
 - 1) 기초실은 공유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조치를 해야 함 ⇨ 윤감실은 개별적 징계 조치만을 할 수 있을 뿐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음 ⇨ 정보 취합 및 취합된 정보의 가공,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출해 낸 후 추진해야 할 각종 정책들을 행정처 내 각 실국에 분배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의 고유의 업무임
 - 2) 기초실이 행사 주관, 자료 취합, 의견 등의 업무만 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임 ⇨ 정책실, 윤감실에는 이와 같은 관점이 존재함
 - 3) 윤감실에서 각종 정보를 기초실에 주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임
- 정보 수집 방법
 - 행정처 심의관들 사이의 정보 공유: 각종 TF 뒤풀이 등을 통해 들은 정보 공유
 - 법원문화연구반 자료는 기초실에서 검토해야 함
- 고충법관제도
- 익명카페, 여성법관커뮤니티
- 코트넷 커뮤니티 동향 보고(주간 보고)
- 기획법관 보고 ⇨ 주간보고로 전환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내부 연구진행상황 점검**
 - (최○○) 판결 정보의 공개 및 이용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2016년 각급 법원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정리**
 - 정책 추진에 반영할만한 모범사례 추출, 정리 ⇨ 행정처 및 각급 법원 공유
- **2017년 사법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 작성**
- **2017년 지원장 연수**
- **대통령 탄핵 절차 검토 ⇨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 가부**
 - 김○○ 교수 논문 읽기
 - 탄핵과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 가부
- **특검법 관련 쟁점 검토**
 - 특검법 관련 논문 읽기
- **최순실 사건 관련 쟁점 검토**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진행 상황
- **재판연구원 간담회 개최 여부**
 - 2015. 11. 10. 서울고등 권역, 2015. 11. 12. 대전고등 권역 실시
 - 재판연구원 간담회 2015년 실시 ⇨ 2016년 실시 여부
- **기획법관 제도 개선 방안**
 - 검찰에서 기획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기획2에게 과제 부과
- **함진규 의원님**
 - 시흥시법원
- **국정감사 회의장 언론사 취재 지원 관련 개선 사항 검토**
 - 홍보심의관이 항의한 내용 관련
 - 수감계획서나 매뉴얼에 반영할 내용이 무엇인지
 - 앞으로 기조실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홍보심의관실의 취재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확인하는 프로세스 구축해야 함
 - 기조실 사무관은 홍보심의관실 사무관하고도 연락해야 함
- **대외기관 자료 제출 업무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점검**
 - 기획제1심의관(중요)과 기획조정심의관(일상적인 것)의 업무 분장 점검

- **약식명령 관련 인권위 이행권고결정문 - 처장님 수신인**
 - 사법지원실에 진행 상황 확인
- **국정감사 결과 정리**
 - 각급 법원 예상질의답변 취합 ➡ 사법행정커뮤니티에 게시
 - 수감 계획 작성 관련 공보관실과 사전 협의 필요 (공보관님, 홍보심의관님과 전화)
- **홍보조직 개편**
 - 인사운영심의관 공문 ➡ 직원들의 임용 전 경력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김○○ 부장님**
 - 김영란법 적용 여부
 - 점심식사 일정 확정
- **각급 법원 TF 현황 파악**
 - 박○○ 판사
- **판사회의, 사법행정위원회, 윤리심의위원회 발족**
- **김○○ 보좌관님 - 정○○ 부장님과 저녁식사**
- **최○○ 제안**
 - 지방지 칼럼에 실리는 칼럼의 경우 각급 법원공보관이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 확립
- **정갑윤 의원실 전○○ 비서**
 - 예산 설명회 개최
- **박주민 의원 ⇨ 언론스크랩 제공 가부**
- **이○○ 대법관님 - 대법관회의 회의록 작성 필요**
- **김영란법**
 - 법률 및 시행령 1회독
 - 헌법재판소 결정문 1회독
 - 윤감실에서 자료 받아서 1회독
- **이○○ 지원장님께 연락**
- **무죄 판결 주문 변경**

○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대응**

- 김○○ 판사와 유기적 연락 체계 구축

○ **법원행정처 전체 행사 취합, 보고 체계 확립**

- 박○○ 사무관님 ⇨ 매주 행사계획 취합 ⇨ 공보관실 전달
- 기획1심의관 보고
- 주간보고, 일일보고 ⇨ 카카오톡도 확인

○ **청문회 노하우, 개선 사항 정리**

- 8. 22.(월)부터 정리

○ **법사위 위원 성향 분석 ⇨ 국정감사 前 보고 필요**

- 지역구 ⇨ 지역구 현안, 지역구 내 법원 신설 요구 등, 지역구 관련 소송
- 출생지 ⇨ 출생지 관련 현안
- 선거재판 기타 소송 계속 현황
- 대표 발의 법률안
- 국정감사 발언 내용 분석
- 국회 발언 내용 정리 ⇨ 회의록 분석
- 법사위원별 질의사항 정리
 - 전체회의에서 질의한 내용 순서대로 정리
- 법사위원별 관심 사항 파악 ⇨ **위원별로 2~3쪽으로 정리**
 - 프로필, 컨택포인트, 친분 있는 법관, 가족관계, 교우관계
 - 언론보도 분석, 운영 블로그 등 분석
 - 출판기념회 내용, 발간 책자, 자서전 등 분석
 - 법안발의 내역, 자료제출 요구 내역
 - 선거범죄 기소, 재판 현황
 - 기타 재판 등 계속 현황
 - 보좌관, 비서관에게 문의

○ **국회의원 성향 분석**

- 지역구 ⇨ 지역구 현안, 지역구 내 법원 신설 요구 등, 지역구 관련 소송
- 출생지 ⇨ 출생지 관련 현안
- 선거재판 기타 소송 계속 현황
- 대표 발의 법률안
- 국회 발언 내용 정리 ⇨ 회의록 분석

○ **기획1실, 국회팀 컴퓨터 하드의 업무 관련 자료 복사**

- 대용량 하드 디스크에 담아달라고 부탁
- **[처장님] 검찰개혁 논의 상황 정리 보고**
 - 더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 검찰개혁 논의가 사법부에 미칠 영향
- **[차장님] 고○○ 교수님 관련 자료 보고**
- **[차장님] 4차 산업혁명 관련 보고**
- **[차장님] 사무분담 기준 변경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
 - 해외연수 법관에 과제 부과
- **[차장님] 사법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종료 후 반응과 향후 전망
- **판사회의 대응 논리**
 - 사법행정위원회와의 관계 더욱 정치하게 정리
- **[처장님]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 (국회 속기록)**
- **[처장님] 김진태 의원의 국회 발언 내용**
 - 김진태 의원에 대한 동향 분석 필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국회 토론회**
 - 자료집 확보
- **[아이디어] 행정소송 관할 확대, 헌법소원 폐지**
- **[처장님] 각급 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더민주당 공약 관련 확인**
- **각급 법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대법원장님 업무보고,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의전**
 -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의전 개선 방안 검토
 - 발렛파킹 서비스 문제와 함께 검토

○ **국회 요구자료 목록 점검**

-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 배경은 무엇인지 항상 확인해야 함

○ **엑스폴더 등 자료 관리 시스템**

- 임○○,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체계적인 자료 보관,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
 - 과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함
 -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 시스템 벤치마킹 필요

2015. 11. 8. 체크리스트

-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개정해야 함
- (151024) 김○○ 부장님, 김○○ 판사님께 질문
 -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법제도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보면, 재판중계 제도 등에 관하여 외국의 사례를 방대하게 조사하였는데,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당하였고, 어떻게 부탁하여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질문
 - 법원행정처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들(홍보심의관실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현황, 공개변론이 20분 지연 송출되고 있다는 점 등)은 각 실국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였는지 질문
- 법관연수지원팀, 법관연수 운영협의회 ⇨ 윤○○ 부장님께 보고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기초실 및 다른 각 실국에 배포 (기한 → 8/7)
- [아이디어] 상고법원 홍보방안 ⇨ Facebook
- 정책연구용역 [처장님 지시사항]
 - 수익계약 체결 가능 계약
 - 교수들의 경우 실무와 유리된 현상
 - 법관 커뮤니티나 사법정책연구원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
- 처장님 말씀 [법원 友軍 만들기 전략]
- 아래 사람들에 대한 명단 확보 후 사후 관리 방안(연하장 보내기, 사법논집 보내기, 법원소식지 보내기 등) 마련할 것
 - 조사위원(국제실, 정책실, 지원실)
 - 비법관재판연구관
 -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위원
 - 외교부 외무관 등
- 위원회, 상임조정위원, 국선전담
- 차장님 지시사항 - 1소위 중요 법률안 보고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이○○ 판사님께 질문
 - 이행권고결정 권한을 사법보좌관에게 이양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16402)을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하도록 임내현 의원을 접촉, 설득한 구체적 과정
 - 전해철 의원이 2015. 7. 10.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16056): 당사자의 소송진술방식 개선
 - 의원입법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김○○ 부장님 -> 발표비 50만 원 지급
- [차장님] 법정언행컨설팅 개선방안 검토할 것
 - 구체적으로는, 강의형 연수의 개선방안

- 차장님도 인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강의형 연수를 수강한 사실이 있음
- [부당소송] 윤○○ 부장님
- 법정언행 모범 동영상 배포 및 온라인 게재
- [등기국장님] 공탁지원금 관련 대응 방안 → 사법발전재단 현황 면밀히 파악할 것
 - 7/21 다시 지시
- [등기국장님] 공탁금기금운용위원회 규칙 제정
- [차장님] 행정심판규칙 정비
- [처장님] 심리상담프로그램 관련 이○○ 국장 이메일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권○○ 심의관님과 상의
- [실장님] 부당소송, 1인 시위 활성화 방안, 매뉴얼 업데이트, 홍보 ⇨ 예산 사용 관련 점검 필요
- [실장님]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건수 없으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총무과에 알리는 방안
 - 매년 공문 시행
- [실장님] 정책연구용역 예산 사용 관련 상황 점검
- [실장님]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교수님 정책연구용역 커뮤니티 가입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열람 방법
- [실장님] 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 방안 ⇨ 연수법관 부과과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
- [처장님] 서○○ 같은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처장님] 재항고사건, 행정심판사건, 진정/민원사건
 - [실장님] 민원서류 접수 가능한지 여부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연구관실과 상의 ⇨ 소권 남용 논리 등
 - 예)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한 대법원 2014두36358 판결 등
 - 해외연수법관 수시과제 부과
 - 정책연구용역 발주
 - 사법정책연구용역
- [처장님] (6월 분기실국장 회의 지시사항) 법학전문대학원 대책 마련
- [실장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관련 피해 사례 ⇨ 대형 로펌 확인
 - 이○○, 김○○○, 박○○에게 부탁
- [실장님] 김○○ 부장님 요청사항 - 의무이행소송 관련 스토리화
- 사법발전재단 : 함○○ 부장판사님(대등재판부, 재판연구원 매뉴얼)

- [실장님] 행정심판위원회 간소화 방안
- [실장님 말씀] Assessment 활용방안 적극 검토
 - 법원장 보임에 활용 가능함
- [실장님 말씀] 전국 재판부로부터 문제 있는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
- 연임법관연수 준비
 - 김○○ 형님이 부탁하신 국내연수 관련 예산 증액 요청(조○○ 사무관님)
 - 기획총괄부장님 명의로 연수보고서 제출 독촉 메일 발송
- 공공데이터 관련 캠프 현황 파악 보고
- [실장님 말씀] 석사 과정 후기 선발 여부도 검토
- 석사과정 위탁 교육 개선 방안 마련
 - 법관 : 일반직 비율을 50:50
 - 법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석사과정 적극 발굴
 - 법관들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와 같이 근무평정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
 - 지원자가 적거나, 일반직 위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예산 불용 처리 ⇨ 예산 항목이 수 용비인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부당소송 관련 ⇨ 법원장 간담회 내용 검토 ⇨ 즉시 시행할 내용 시행착수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불필요한 회의 불참석 가능 여부) 검토
- 지금까지의 모든 이메일 확인 ⇨ 캘린더 및 업무계획표에 반영
- 시○○ 판사님 작년도 발송 이메일 전달받기

2015. 11. 11. 체크리스트

- 외국어 연수
- 석사과정 선발
- 행정심판
- 등기국장님 숙제
- 박○○ 부장님 일정 잡기
- 복귀 법원장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개정해야 함
- (151024) 김○○ 부장님, 김○○ 판사님께 질문
 -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법제도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보면, 재판중계 제도 등에 관하여 외국의 사례를 방대하게 조사하였는데,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당하였고, 어떻게 부탁하여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질문
 - 법원행정처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들(홍보심의관실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현황, 공개변론이 20분 지연 송출되고 있다는 점 등)은 각 실국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였는지 질문

○ 법관연수지원팀, 법관연수 운영협의회 ⇨ 윤○○ 부장님께 보고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기초실 및 다른 각 실국에 배포 (기한 → 8/7)

○ [아이디어] 상고법원 홍보방안 ⇨ Facebook

○ 정책연구용역 [처장님 지시사항]

- 수의계약 체결 가능 계약
- 교수들의 경우 실무와 유리된 현상
- 법관 커뮤니티나 사법정책연구원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 처장님 말씀 [법원 友軍 만들기 전략]

▣ 아래 사람들에 대한 명단 확보 후 사후 관리 방안(연하장 보내기, 사법논집 보내기, 법원소식지 보내기 등) 마련할 것

- 조사위원(국제실, 정책실, 지원실)
- 비법관재판연구원
-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위원
- 외교부 외무관 등

▣ 위원회, 상임조정위원, 국선전담

○ 차장님 지시사항 - 1소위 중요 법률안 보고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원님 지시사항 이행
- 이○○ 판사님께 질문
 - 이행권고결정 권한을 사법보좌관에게 이양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16402)을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하도록 임내현 의원을 접촉, 설득한 구체적 과정
 - 전해철 의원이 2015. 7. 10.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16056): 당사자의 소송진술방식 개선
 - 의원입법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김○○ 부장님 -> 발표비 50만 원 지급
- [차장님] 법정언행컨설팅 개선방안 검토할 것
 - 구체적으로는, 강의형 연수의 개선방안
 - 차장님도 인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강의형 연수를 수강한 사실이 있음
- [부당소송] 윤○○ 부장님
- 법정언행 모범 동영상 배포 및 온라인 게재
- [등기국장님] 공탁지원금 관련 대응 방안 → 사법발전재단 현황 면밀히 파악할 것
 - 7/21 다시 지시
- [등기국장님] 공탁금기금운용위원회 규칙 제정
- [차장님] 행정심판규칙 정비
- [처장님] 심리상담프로그램 관련 이○○ 국장 이메일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권○○ 심의관님과 상의
- [실장님] 부당소송, 1인 시위 활성화 방안, 매뉴얼 업데이트, 홍보 ⇨ 예산 사용 관련 점검 필요
- [실장님]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건수 없으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총무과에 알리는 방안
 - 매년 공문 시행
- [실장님] 정책연구용역 예산 사용 관련 상황 점검
- [실장님]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교수님 정책연구용역 커뮤니티 가입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열람 방법
- [실장님] 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 방안 ⇨ 연수법관 부과과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
- [처장님] 서○○ 같은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처장님] 재항고사건, 행정심판사건, 진정/민원사건
 - [실장님] 민원서류 접수 가능한지 여부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연구관실과 상의 ⇨ 소권 남용 논리 등
- 예)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한 대법원 2014두36358 판결 등
- 해외연수법관 수시과제 부과
- 정책연구용역 발주
- 사법정책연구용역

- [처장님] (6월 분기실국장 회의 지시사항) 법학전문대학원 대책 마련
- [실장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관련 피해 사례 ⇨ 대형 로펌 확인
 - 이○○, 김○○○, 박○○에게 부탁
- [실장님] 김○○ 부장님 요청사항 - 의무이행소송 관련 스토리화
- 사법발전재단 : 함○○ 부장판사님(대등재판부, 재판연구원 매뉴얼)
- [실장님] 행정심판위원회 간소화 방안
- [실장님 말씀] Assessment 활용방안 적극 검토
 - 법원장 보임에 활용 가능함
- [실장님 말씀] 전국 재판부로부터 문제 있는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
- 연임법관연수 준비
 - 김○○ 형님이 부탁하신 국내연수 관련 예산 증액 요청(조○○ 사무관님)
 - 기획총괄부장님 명의로 연수보고서 제출 독촉 메일 발송
- 공공데이터 관련 캠프 현황 파악 보고
- [실장님 말씀] 석사 과정 후기 선발 여부도 검토
- 석사과정 위탁 교육 개선 방안 마련
 - 법관 : 일반직 비율을 50:50
 - 법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석사과정 적극 발굴
 - 법관들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와 같이 근무평정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
 - 지원자가 적거나, 일반직 위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예산 불용 처리 ⇨ 예산 항목이 수 용비인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부당소송 관련 ⇨ 법원장 간담회 내용 검토 ⇨ 즉시 시행할 내용 시행착수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불필요한 회의 불참석 가능 여부) 검토
- 지금까지의 모든 이메일 확인 ⇨ 캘린더 및 업무계획표에 반영
- 시○○ 판사님 작년도 발송 이메일 전달받기

체크리스트 (2018. 7. 31.)

- **전국법원장회의 준비**
 - 2017년도 업무계획 작성
- **판사회, 사법행정위원회, 윤리심의위원회 발족**
- **입법추진과제 점검 ⇨ 입법추진계획 업데이트**
- **법원행정처 발전 방향 ⇨ 주요 사법 과제 추출**
 - 의제설정기능
 - 인력, 조직 진단
- **각급 법원 순회간담회 보고**
 - 전국 법원장 순회 간담회 논의 결과 종합 보고
 - 각급 법원 순회간담회 실시 방안
- **대법원장님 퇴임 기념 논문집 TF 구성**
- **이춘석 의원실 이○○ 비서관**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제출이 어려운 이유(이춘석 943874)
- **규칙 개정**
- **국감 오만찬 관련 안내 ⇨ 기획법관**
- **김○○ 대법관님 행정사항 안내**
- **전국 법원장 회의 날짜 잡기**
- **김○○ 보좌관님 - 정○○ 부장님과 저녁식사**
- **[차장님] 내부 정보 취합 보고 방안**
- **[차장님, 실장님]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방안**
- **처장님 - 법사위원 분석**
- **전문분야연구회 예산설명서**
 -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감액 주장에 대한 방어 논리
- **장○○ - 정성호 의원 요청사항 - 고법부장 이상 프로필 제공**
- **[기조실장님] 부산가정법원 부부, 청소년 상담아카데미 개설을 위한**

예산재배정 요청서

○ 박○○ 부장님

-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안내메일 정정

○ 최○○ 제안

- 지방지 칼럼에 실리는 칼럼의 경우 각급 법원공보관이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 확립

○ 정갑윤 의원실 전○○ 비서

- 예산 설명회 개최

○ NAVER 약속 10/6

○ 박주민 의원 ⇨ 언론스크랩 제공 가부

○ 이○○ 대법관님 - 대법관회의 회의록 작성 필요

○ 대법원장님 취임 5주년 행사

○ 김영란법

- 법률 및 시행령 1회독
- 헌법재판소 결정문 1회독
- 윤감실에서 자료 받아서 1회독

○ 이○○ 지원장님께 연락

○ 무죄 판결 주문 변경

○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대응

- 김○○ 판사와 유기적 연락 체계 구축

○ 법원행정처 전체 행사 취합, 보고 체계 확립

- 박○○ 사무관님 ⇨ 매주 행사계획 취합 ⇨ 공보관실 전달
- 기획1심의관 보고
- 주간보고, 일일보고 ⇨ 카카오톡도 확인

○ 에어컨 틀기 📩 [대법원, 서울중앙]

- 에어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었음
- 국회, 검찰 📩 판사님들의 불만이 매우 큼
- 에어컨 틀면 판사님들에 대한 좋은 복지 아이템이 될 것임

- 법률신문 기사 ☞ 정부 고시 언급

○ 이춘석 의원실 - 국민신문고 사건 설명

○ 영남권 법원 순회간담회

- 법원장님 프로필 보고
- 각급 법원 현황 보고
- 처장님 말씀 자료
- 자료집
- 드레스 코드, 간식 준비 필요
- 대전 권역 간담회는 자리가 비좁았음

○ 분기실국장회의 관련 처장님 지시사항 기초실 배부, 보고 여부 점검

○ 청문회 노하우, 개선 사항 정리

- 8. 22.(월)부터 정리

○ 법사위 위원 성향 분석 ⇨ 국정감사 前 보고 필요

- 지역구 ⇨ 지역구 현안, 지역구 내 법원 신설 요구 등, 지역구 관련 소송
- 출생지 ⇨ 출생지 관련 현안
- 선거재판 기타 소송 계속 현황
- 대표 발의 법률안
- 국정감사 발언 내용 분석
- 국회 발언 내용 정리 ⇨ 회의록 분석
- 법사위원별 질의사항 정리
 - 전체회의에서 질의한 내용 순서대로 정리
- 법사위원별 관심 사항 파악 ⇨ 위원별로 2~3쪽으로 정리
 - 프로필, 컨택포인트, 친분 있는 법관, 가족관계, 교우관계
 - 언론보도 분석, 운영 블로그 등 분석
 - 출판기념회 내용, 발간 책자, 자서전 등 분석
 - 법안발의 내역, 자료제출 요구 내역
 - 선거범죄 기소, 재판 현황
 - 기타 재판 등 계속 현황
 - 보좌관, 비서관에게 문의

○ 국회의원 성향 분석

- 지역구 ⇨ 지역구 현안, 지역구 내 법원 신설 요구 등, 지역구 관련 소송

- 출생지 ⇨ 출생지 관련 현안
- 선거재판 기타 소송 계속 현황
- 대표 발의 법률안
- 국회 발언 내용 정리 ⇨ 회의록 분석
- 정○○ 행정관님 등 기획1실, 국회팀 컴퓨터 하드의 업무 관련 자료 복사
 - 대용량 하드 디스크에 담아달라고 부탁
- [차장님]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한 종합 실행계획 점검
- [처장님] 검찰개혁 논의 상황 정리 보고
 - 더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 검찰개혁 논의가 사법부에 미칠 영향
- 회생법원 추진
 - 인원, 비용 추계, 경제 6단체와의 연계 방안
- [차장님] 고○○ 교수님 관련 자료 보고
- [차장님] 4차 산업혁명 관련 보고
- [차장님] 사무분담 기준 변경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
 - 해외연수 법관에 과제 부과
- [차장님] 사법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종료 후 반응과 향후 전망
- 판사회의 대응 논리
 - 사법행정위원회와의 관계 더욱 정치하게 정리
- [처장님]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 (국회 속기록)
- [처장님] 김진태 의원의 국회 발언 내용
 - 김진태 의원에 대한 동향 분석 필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국회 토론회
 - 자료집 확보
- [아이디어] 행정소송 관할 확대, 헌법소원 폐지

- [실장님] 개헌 가능의식 2/3 도달 여부 점검
- [처장님] 각급 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더민주당 공약 관련 확인
- 각급 법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대법원장님 업무보고,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사법연수원] 경력별연수 불참 사유서 송부
- [사법정책연구원] 성희룡 내규 대법원장님 승인 관련 처리
- 법원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당선 축하 만찬 여부
- 법원문화연구반 과제 추출
- [7. 8.] 국제인권법연구회 전관예우토론회 논의 결과 확인

○ **사법발전계획 작성**

- 임○○ 부장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문의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의전**

-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의전 개선 방안 검토
- 발렛파킹 서비스 문제와 함께 검토

○ **차장님 지시사항**

-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체계

○ **홍보 관련 구상**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대법원장님 해외순방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자료집 작성**

○ **김○○ 국회 서기관과 점심 식사**

- 서래마을 정도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
- 국회 법사위가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는지?
- 국회 본회의 일정은 어떻게 확정되는지?
- 국회의 전반에 대한 상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등등
- 국회선진화법에 대하여도 공부 ⇨ 현재 결정

○ **개헌 논의 관련**

-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구성 상황 점검
-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활동 상황 점검
- 헌법재판소의 헌재법 개정의견서 제출 관련 진행상황 점검

○ **국회 요구자료 목록 점검**

-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 배경은 무엇인지 항상 확인해야 함

체크리스트 (2018. 7. 31.)

- 사법행정발전을 위한 세미나 ⇨ 각 실국별로 의견 취합
 - 기조실장님 강의 자료 ⇨ 전체 실국 취합(특히, 예산, 조직, 시설 등)
- 분기실국장회의 자료집
- 홍일표 의원님 이○○ 비서관님께 메일 보내기
- 박범계 의원실 배○○ 보좌관님 부탁 사항 - 몸배석
- [차장님] 기획총괄심의관 역할 관련 보고서
- [기조실장님] 대선 후보 공약 분석 보고
- 2017년 주요 업무 계획 검토
 - 법원행정처 주요 업무 계획 인쇄 의뢰
- 제20대 국회 입법추진계획 수정, 보완
- 처장님 사법정책연구원 심포지엄 축사 상신
- 권○○ 위원장님 증인 구인 관련 법률안 검토 보고
- 권○○ 대법관님 각급 법원 방문 계획
- 법원행정처장 광주고등법원, 지방법원 방문 👁 결과 보고
- 전국 법원 순회 간담회 결과 취합 보고
 - 2016년 8월 전국 법원장 순회 간담회 논의 결과도 함께 종합하여 보고
- 차장님 ⇨ 2. 1. 재판연구원 강의 자료
- 개헌대응반 관련 주제 정리 배분
- (1. 23.) 기관장 업무 편람 발간
 - 주례실국장회의 보고 ⇨ 의견 취합
 - 기관장 업무 편람 발간을 위한 TF 구성
- 신임 법원장 간담회 기본계획 수립
 - 1. 19.(목) 부장회의 보고
- 국제법률심포지엄 주제 선정

- **전문분야연구회 2017년 운영 방향 및 예산 배정 방안**
- **[기조실장님] 행정처 TF 현황**
- **[차장님, 실장님]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방안**
 - 홍보조직 개편 논의 포함, 인력, 조직 진단
 - 법원행정처 발전 방향 ⇨ 주요 사법 과제 추출
 - 의제설정기능, 법원행정처 개편
 - 각 심의관 ⇨ 타임 시트 작성 필요 (로펌의 타임 시트 작성 노하우 공유)
 - 각 실국별 자료 공유 필요 ⇨ 보고서 등록 시스템 도입
 - 자료 보존 필요 ⇨ 보고서 등록 시스템 도입
 - 조직개편 - 직원 증원
 - [윤리감사관실] 1실 사무관 1명, 실무관 1명, 2실 행정관 1명
 - 조직심의관, 인력운영심의관
- **분기실국장회의 ⇨ 1. 24.**
 - 분기실국장회의 관련 처장님 기조실 관련 지시사항 이행 여부 점검
- **백서 발간 TF**
 - 예산 관련 검토, 사법발전계획, 사법의 현황과 전망 책자 등 파일 업로드
 - 대법원장님 임기 중 중점추진사업 선정
 - 대법원장님께서 지난 5년간 추진하셨던 업적 정리

- 대법관님 행정사항 안내 ⇨ 2017년 개정판
- 사법신뢰개선방안
 - 이행 여부 점검
- 대법관님 행정사항 안내 2017년도판 업데이트
 - 김○○ 대법관님 등 포함
- 이○○ 대법관님 퇴임 관련 안내 자료
- 기초실장님
 - 부산가정법원 부부, 청소년 상담아카데미 개설을 위한 예산재배정 요청서
 - 재판실무연구회 사례비 지급 방안 검토 (강○○ 법원장님)
 - 청주지방법원(?) 건의사항 검토

○ 개헌 정국 분석 보고서

○ [차장님] 내부 정보 취합 보고 방안, 예방적 감찰 활동 강화

- 각급 법원 풍문, 첩보 수집 방안
 - 각급 법원 정보 취합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점검
- [소관] 기획조정실
- 중요한 것은 정보, 첩보 수집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 사항 추출 ⇨ 반드시 윤리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논리 필연성은 없음
- 사법행정라인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예방적 감찰 활동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
- 정보, 첩보 수집 후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들은 윤리감사관실로 전달해주는 방식이 적절
- 반대의 경우, 윤리감사관실 특유의 비밀성, 폐쇄성으로 행정처 전체 차원의 기민한 대응이 어려움
 -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큰 문제
 - 역으로, 공유해야 할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임 ⇨ 기초실은 모든 정보를 취합하되, 보안 유지에 책임을 지고, 역으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함
 - 1) 기초실은 공유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조치를 해야 함 ⇨ 윤감실은 개별적 징계 조치만을 할 수 있을 뿐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음 ⇨ 정보 취합 및 취합된 정보의 가공,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출해 낸 후 추진해야 할 각종 정책들을 행정처 내 각 실국에 분배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의 고유의 업무임
 - 2) 기초실이 행사 주관, 자료 취합, 의견 등의 업무만 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임 ⇨ 정책실, 윤감실에는 이와 같은 관점이 존재함
 - 3) 윤감실에서 각종 정보를 기초실에 주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임
- 정보 수집 방법
 - 행정처 심의관들 사이의 정보 공유: 각종 TF 뒤풀이 등을 통해 들은 정보 공유
 - 법원문화연구반 자료는 기초실에서 검토해야 함
- 고충법관제도
- 익명카페, 여성법관커뮤니티
- 코트넷 커뮤니티 동향 보고(주간 보고)
- 기획법관 보고 ⇨ 주간보고로 전환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내부 연구진행상황 점검**
 - (최○○) 판결 정보의 공개 및 이용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2016년 각급 법원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정리**
 - 정책 추진에 반영할만한 모범사례 추출, 정리 ⇨ 행정처 및 각급 법원 공유
- **2017년 사법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 작성**
- **2017년 지원장 연수**
- **대통령 탄핵 절차 검토 ⇨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 가부**
 - 김○○ 교수 논문 읽기
 - 탄핵과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 가부
- **특검법 관련 쟁점 검토**
 - 특검법 관련 논문 읽기
- **최○○ 사건 관련 쟁점 검토**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진행 상황
- **재판연구원 간담회 개최 여부**
 - 2015. 11. 10. 서울고등 권역, 2015. 11. 12. 대전고등 권역 실시
 - 재판연구원 간담회 2015년 실시 ⇨ 2016년 실시 여부
- **기획법관 제도 개선 방안**
 - 검찰에서 기획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기획2에게 과제 부과
- **함진규 의원님**
 - 시흥시법원
- **국정감사 회의장 언론사 취재 지원 관련 개선 사항 검토**
 - 홍보심의관이 항의한 내용 관련
 - 수감계획서나 매뉴얼에 반영할 내용이 무엇인지
 - 앞으로 기조실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홍보심의관실의 취재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확인하는 프로세스 구축해야 함
 - 기조실 사무관은 홍보심의관실 사무관하고도 연락해야 함
- **대외기관 자료 제출 업무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점검**
 - 기획제1심의관(중요)과 기획조정심의관(일상적인 것)의 업무 분장 점검

- **약식명령 관련 인권위 이행권고결정문 - 처장님 수신인**
 - 사법지원실에 진행 상황 확인
- **국정감사 결과 정리**
 - 각급 법원 예상질의답변 취합 ➡ 사법행정커뮤니티에 게시
 - 수감 계획 작성 관련 공보관실과 사전 협의 필요 (공보관님, 홍보심의관님과 전화)
- **홍보조직 개편**
 - 인사운영심의관 공문 ➡ 직원들의 임용 전 경력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김○○ 부장님**
 - 김영란법 적용 여부
 - 점심식사 일정 확정
- **각급 법원 TF 현황 파악**
 - 박○○ 판사
- **판사회의, 사법행정위원회, 윤리심의위원회 발족**
- **김○○ 보좌관님 - 정○○ 부장님과 저녁식사**
- **최○○ 제안**
 - 지방지 칼럼에 실리는 칼럼의 경우 각급 법원공보관이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 확립
- **정갑윤 의원실 전○○ 비서**
 - 예산 설명회 개최
- **박주민 의원 ⇨ 언론스크랩 제공 가부**
- **이○○ 대법관님 - 대법관회의 회의록 작성 필요**
- **김영란법**
 - 법률 및 시행령 1회독
 - 헌법재판소 결정문 1회독
 - 윤감실에서 자료 받아서 1회독
- **이○○ 지원장님께 연락**
- **무죄 판결 주문 변경**

○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대응

- 김○○ 판사와 유기적 연락 체계 구축

○ 법원행정처 전체 행사 취합, 보고 체계 확립

- 박○○ 사무관님 ⇨ 매주 행사계획 취합 ⇨ 공보관실 전달
- 기획1심의관 보고
- 주간보고, 일일보고 ⇨ 카카오톡도 확인

○ 청문회 노하우, 개선 사항 정리

- 8. 22.(월)부터 정리

○ 법사위 위원 성향 분석 ⇨ 국정감사 前 보고 필요

- 지역구 ⇨ 지역구 현안, 지역구 내 법원 신설 요구 등, 지역구 관련 소송
- 출생지 ⇨ 출생지 관련 현안
- 선거재판 기타 소송 계속 현황
- 대표 발의 법률안
- 국정감사 발언 내용 분석
- 국회 발언 내용 정리 ⇨ 회의록 분석
- 법사위원별 질의사항 정리
 - 전체회의에서 질의한 내용 순서대로 정리
- 법사위원별 관심 사항 파악 ⇨ 위원별로 2~3쪽으로 정리
 - 프로필, 컨택포인트, 친분 있는 법관, 가족관계, 교우관계
 - 언론보도 분석, 운영 블로그 등 분석
 - 출판기념회 내용, 발간 책자, 자서전 등 분석
 - 법안발의 내역, 자료제출 요구 내역
 - 선거범죄 기소, 재판 현황
 - 기타 재판 등 계속 현황
 - 보좌관, 비서관에게 문의

○ 국회의원 성향 분석

- 지역구 ⇨ 지역구 현안, 지역구 내 법원 신설 요구 등, 지역구 관련 소송
- 출생지 ⇨ 출생지 관련 현안
- 선거재판 기타 소송 계속 현황
- 대표 발의 법률안
- 국회 발언 내용 정리 ⇨ 회의록 분석

○ 기획1실, 국회팀 컴퓨터 하드의 업무 관련 자료 복사

- 대용량 하드 디스크에 담아달라고 부탁
- **[처장님] 검찰개혁 논의 상황 정리 보고**
 - 더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 검찰개혁 논의가 사법부에 미칠 영향
- [처장님] 고○○ 교수님 관련 자료 보고
- [처장님] 4차 산업혁명 관련 보고
- [처장님] 사무분담 기준 변경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
 - 해외연수 법관에 과제 부과
- **[처장님] 사법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종료 후 반응과 향후 전망
- **판사회의 대응 논리**
 - 사법행정위원회와의 관계 더욱 정치하게 정리
- **[처장님]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 (국회 속기록)**
- **[처장님] 김진태 의원의 국회 발언 내용**
 - 김진태 의원에 대한 동향 분석 필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국회 토론회**
 - 자료집 확보
- [아이디어] 행정소송 관할 확대, 헌법소원 폐지
- **[처장님] 각급 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더민주당 공약 관련 확인**
- **각급 법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대법원장님 업무보고,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의전**
 -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의전 개선 방안 검토
 - 발렛파킹 서비스 문제와 함께 검토

○ **국회 요구자료 목록 점검**

-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 배경은 무엇인지 항상 확인해야 함

○ **엑스폴더 등 자료 관리 시스템**

- 임○○,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체계적인 자료 보관,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
 - 과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함
 -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 시스템 벤치마킹 필요

체크리스트 (2018. 7. 31.)

- 12/15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 차장님 수행자 결정
- **처장님 연하장 명단 정리**
- **전문분야연구회 등 예산 배정**
 - 2016년 하반기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배정
 - 회원 수, 활동 내역 등 평가 ⇨ 15개 연구회에 55,000,000원 배정
 - 2016년 하반기 각급법원 재판 관련 전문분야 연구활동지원비 배정
- **법원행정처장 군부대 위문 및 광주고등법원, 지방법원 방문**
 - 기본계획 수립
 - 법관 및 직원 간담회 준비
 - 건의 사항 등 취합
 - 답변 자료집 작성각급법원 구성원 수, 재판사무감사 평가 등 고려 ⇨ 310,000,000원 배정
- **대법원장님 퇴임 기념 논문집 TF 구성**
 - [1단계] 법원장님 재임 기념 사업 추진
 - [2단계] 대법원장님 임기 중 중점추진사업 선정
 - 대법원장님께서 지난 5년간 추진하셨던 업적 정리
- **2016년 주요 업무계획**
 - [법원행정처] 12. 5.(월), 12. 12.(월) 주례실국장회의, 12. 8.(목) 부장회의
 - [각급법원] 12. 12.(월) 각급 법원에 송부 요청 공문 시행
- **2017년 주요 업무 집행 결과**
- **법관윤리제고방안 ☞ 코트넷 공지**
 - 법원장회의 종료 후 추진 계획 보고 ☞ 코트넷 공지
- **전국 법원 순회 간담회 결과 취합 보고**
 - 전국 법원장 순회 간담회 논의 결과도 함께 종합하여 보고
- **전국 법원장 회의 ☞ 회의 결과 정리 및 보고**
- **처장님 주재 송년회 장소 확정**
 - 12. 5.(월) 보고 목표
 - 송년회 일자 12. 23.(금) ⇨ 2주 전인 12. 9.(금)까지는 보고 완료

○ **정년 퇴직 및 재판연구원 증원 법안 검토 및 발의**

- 재판연구원 정원 조정 관련 아이디어
 - 법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한법협/ 청년변호사회
 - 재판연구원은 고등법원 대등재판부 부장판사, 단독재판부 부장판사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함이 타당
 - [부장판사 이상 법관 수: 723명]
 - 합의부장: 358명, 단독부장: 186명, 단독 1/2 14명, 비재판보직 52명, 고법판사 113명
 - 2017년 2월, 2017년 5월

○ **개헌대응반 업무분장 등**

○ **대법관 행정회의**

○ **4분기 실국장회의**

-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2017년 대법원 주요 정책 및 입법 추진 과제)
- 2015. 12. 29. ☞ 2016. 1. 8.로 변경

○ **김○○ 과장에게 개헌 관련 자료 보내기**

○ **2017년 전국 법원장 간담회, 수석부장회의**

- 일정 확정 ☞ 법원장 간담회 장소 선정 검토
- [이○○ 수석부장님] 2017년 수석부장회의 날짜 결정 필요

- **신년사, 시무식**
 - 대법원장님 신년사
 - 처장님 시무식사
 - 각급 법원 시무식 현황 점검
- **기조실장님**
 - 부산가정법원 부부, 청소년 상담아카데미 개선을 위한 예산재배정 요청서
 - 재판실무연구회 사례비 지급 방안 검토 (강○○ 법원장님)
 - 청주지방법원(?) 건의사항 검토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내부 연구진행상황 점검**
 - (최○○) 판결 정보의 공개 및 이용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박○○ 부장님 출산 축하 선물**
- **법조봉사대상 시상식**
- **대국민설문조사 검토 (이○○)**
- **기관장 업무 편람**
 - 종전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배부
 - 사법행정예 관한 워크숍에서 배부
 - 기관장 업무 편람 발간을 위한 TF 구성
 - 신임법원장 간담회와 연동
 - 예산 업무, 시설 업무
 - 신임 법원장 인사 발령 일자, 예상 인원 정도 파악
- **2017년 상반기 전문분야연구회예산배정**
 - 각 연구회 실적보고서 취합
- **2016년 각급 법원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정리**
 - 정책 추진에 반영할만한 모범사례 추출, 정리 ⇨ 행정처 및 각급 법원 공유
- **2017년 사법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 작성**
- **사법연수원 법원장 연수 준비(사법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
- **2017년 신임 법원장 간담회 준비**
 - [전례] 2016. 2. 3.(수) 오후 4시 실시

○ 2017년 지원장 연수

○ 2015년 주요 업무 집행 결과

- 법원행정처 각 실국에 송부 요청 공문 시행
- 각급 법원에 송부

○ [차장님, 실장님]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방안

- 홍보조직 개편 논의 포함
- 인력, 조직 진단
- 법원행정처 발전 방향 ⇨ 주요 사법 과제 추출
- 의제설정기능
- 법원행정처 개편
 - 각 심의관 ⇨ 타임 시트 작성 필요 (로펌의 타임 시트 작성 노하우 공유)
 - 각 실국별 자료 공유 필요 ⇨ 보고서 등록 시스템 도입
 - 자료 보존 필요 ⇨ 보고서 등록 시스템 도입
- 조직개편 - 직원 증원
 - [윤리감사관실] 1실 사무관 1명, 실무관 1명, 2실 행정관 1명
 - 조직심의관, 인력운영심의관

○ [차장님] 내부 정보 취합 보고 방안, 예방적 감찰 활동 강화

- 각급 법원 풍문, 첩보 수집 방안
 - 각급 법원 정보 취합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점검

- [소관] 기획조정실

- 중요한 것은 정보, 첩보 수집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 사항 추출 ⇨ 반드시 윤리감사관실에서 해야할 논리 필연성은 없음
- 사법행정라인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예방적 감찰 활동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
- 정보, 첩보 수집 후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들은 윤리감사관실로 전달해주는 방식이 적절
- 반대의 경우, 윤리감사관실 특유의 비밀성, 폐쇄성으로 행정처 전체 차원의 기민한 대응이 어려움
 -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큰 문제
 - 역으로, 공유해야 할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임 ⇨ 기초실은 모든 정보를 취합하되, 보안 유지에 책임을 지고, 역으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함

- 1) 기초실은 공유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조치를 해야 함 ⇨ 윤감실은 개별적 징계 조치만을 할 수 있을 뿐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음 ⇨ 정보 취합 및 취합된 정보의 가공,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출해 낸 후 추진해야 할 각종 정책들을 행정처 내 각 실국에 분배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의 고유의 업무임
 - 2) 기초실이 행사 주관, 자료 취합, 의전 등의 업무만 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임 ⇨ 정책실, 윤감실에는 이와 같은 관점이 존재함
 - 3) 윤감실에서 각종 정보를 기초실에 주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임
- 정보 수집 방법
 - 행정처 심의관들 사이의 정보 공유: 각종 TF 뒤풀이 등을 통해 들은 정보 공유
 - 법원문화연구반 자료는 기초실에서 검토해야 함
 - 고층법관제도
 - 익명카페, 여성법관커뮤니티
 - 코트넷 커뮤니티 동향 보고(주간 보고)
 - 기획법관 보고 ⇨ 주간보고로 전환

○ 김○○ 대법관님 행정사항 안내

- **대통령 탄핵 절차 검토** ⇨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 가부**
 - 김○○ 교수 논문 읽기
 - 탄핵과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 가부
- **특검법 관련 쟁점 검토**
 - 특검법 관련 논문 읽기
- **최○○ 사건 관련 쟁점 검토**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진행 상황 점검
- **권○○ 판사 - 대법원 자문위원회 관련 메일 내용 검토**
- **김○○ 대법관님 행정사항 안내**
- **국제심의관, 문○○ 심의관 요청사항** ⇨ **대법원 규칙 개정**
- **국회입법추진계획 보완**
 - (차장님 지시) 국회입법추진계획 파란색으로 표시 & 업데이트 & 구간 표시
- **사법신뢰개선방안**
 - 이행 여부 점검

○ **점심식사**

- 김○○ 민사과장님
- 김○○ 사무관님

○ **재판연구원 간담회 개최 여부**

- 2015. 11. 10. 서울고등 권역, 2015. 11. 12. 대전고등 권역 실시
- 재판연구원 간담회 2015년 실시 ⇨ 2016년 실시 여부

○ **2017년 2월 초 신임법원장간담회 개최**

- 2017년 기관장 업무편람 발간
- 1박 2일로 추진

○ **기획법관 제도 개선 방안**

- 검찰에서 기획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기획2에게 과제 부과

○ **함진규 의원님**

- 시흥시법원

○ **국정감사 회의장 언론사 취재 지원 관련 개선 사항 검토**

- 홍보심의관이 항의한 내용 관련
- 수감계획서나 매뉴얼에 반영할 내용이 무엇인지
- 앞으로 기조실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홍보심의관실의 취재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확인하는 프로세스 구축해야 함
- 기조실 사무관은 홍보심의관실 사무관하고도 연락해야 함

○ **대외기관 자료 제출 업무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점검**

- 기획제1심의관(중요)과 기획조정심의관(일상적인 것)의 업무 분장 점검

○ **약식명령 관련 인권위 이행권고결정문 - 처장님 수신인**

- 사법지원실에 진행 상황 확인

○ **국정감사 결과 정리**

- 각급 법원 예상질의답변 취합 ⇨ 사법행정커뮤니티에 게시
- 수감 계획 작성 관련 공보관실과 사전 협의 필요 (공보관님, 홍보심의관님과 전화)

○ **홍보조직 개편**

- 인사운영심의관 공문 ⇨ 직원들의 임용 전 경력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기조실장님 지시] 도산법원 신설 관련**
 - 박○○ 판사에게 전달 ⇨ 도산법원 신설될 경우 시설, 예산 추가 소요가 있는지 여부 검토
 - 예산담당관(예산), 조직심의관(정원, 인력), 시설담당관(시설)
- **김○○ 부장님**
 - 김영란법 적용 여부
 - 점심식사 일정 확정
- **각급 법원 TF 현황 파악**
 - 박○○ 판사
- **판사회의, 사법행정위원회, 윤리심의위원회 발족**
- **입법추진과제 점검 ⇨ 입법추진계획 업데이트**
- **규칙 개정**
- **김○○ 보좌관님 - 정○○ 부장님과 저녁식사**
- **처장님 - 법사위원 분석**
- **박○○ 부장님**
 -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안내메일 정정
- **최○○ 제안**
 - 지방지 칼럼에 실리는 칼럼의 경우 각급 법원공보관이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 확립
- **정갑윤 의원실 전도진 비서**
 - 예산 설명회 개최
- **박주민 의원 ⇨ 언론스크랩 제공 가부**
- **이○○ 대법관님 - 대법관회의 회의록 작성 필요**
- **김영란법**
 - 법률 및 시행령 1회독
 - 헌법재판소 결정문 1회독
 - 윤감실에서 자료 받아서 1회독
- **이○○ 지원장님께 연락**

- 무죄 판결 주문 변경
-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대응
 - 김○○ 판사와 유기적 연락 체계 구축
- 법원행정처 전체 행사 취합, 보고 체계 확립
 - 박○○ 사무관님 ⇨ 매주 행사계획 취합 ⇨ 공보관실 전달
 - 기획1심의관 보고
 - 주간보고, 일일보고 ⇨ 카카오톡도 확인
- 영남권 법원 순회간담회
 - 법원장님 프로필 보고
 - 각급 법원 현황 보고
 - 처장님 말씀 자료
 - 자료집
 - 드레스 코드, 간식 준비 필요
 - 대전 권역 간담회는 자리가 비좁았음
- 분기실국장회의 관련 처장님 지시사항 기초실 배부, 보고 여부 점검
- 청문회 노하우, 개선 사항 정리
 - 8. 22.(월)부터 정리
- 법사위 위원 성향 분석 ⇨ 국정감사 前 보고 필요
 - 지역구 ⇨ 지역구 현안, 지역구 내 법원 신설 요구 등, 지역구 관련 소송
 - 출생지 ⇨ 출생지 관련 현안
 - 선거재판 기타 소송 계속 현황
 - 대표 발의 법률안
 - 국정감사 발언 내용 분석
 - 국회 발언 내용 정리 ⇨ 회의록 분석
 - 법사위원별 질의사항 정리
 - 전체회의에서 질의한 내용 순서대로 정리
 - 법사위원별 관심 사항 파악 ⇨ 위원별로 2~3쪽으로 정리
 - 프로필, 컨택포인트, 친분 있는 법관, 가족관계, 교우관계
 - 언론보도 분석, 운영 블로그 등 분석
 - 출판기념회 내용, 발간 책자, 자서전 등 분석
 - 법안발의 내역, 자료제출 요구 내역

- 선거범죄 기소, 재판 현황
- 기타 재판 등 계속 현황
- 보좌관, 비서관에게 문의

○ 국회의원 성향 분석

- 지역구 ⇨ 지역구 현안, 지역구 내 법원 신설 요구 등, 지역구 관련 소송
- 출생지 ⇨ 출생지 관련 현안
- 선거재판 기타 소송 계속 현황
- 대표 발의 법률안
- 국회 발언 내용 정리 ⇨ 회의록 분석

○ 정○○ 행정관님 등 기획1실, 국회팀 컴퓨터 하드의 업무 관련 자료 복사

- 대용량 하드 디스크에 담아달라고 부탁

○ [처장님] 검찰개혁 논의 상황 정리 보고

- 더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 검찰개혁 논의가 사법부에 미칠 영향

○ [차장님] 고○○ 교수님 관련 자료 보고

○ [차장님] 4차 산업혁명 관련 보고

○ [차장님] 사무분담 기준 변경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

- 해외연수 법관에 과제 부과

○ [차장님] 사법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종료 후 반응과 향후 전망

○ 판사회의 대응 논리

- 사법행정위원회와의 관계 더욱 정치하게 정리

○ [처장님]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 (국회 속기록)

○ [처장님] 김진태 의원의 국회 발언 내용

- 김진태 의원에 대한 동향 분석 필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국회 토론회

- 자료집 확보

○ [아이디어] 행정소송 관할 확대, 헌법소원 폐지

○ **[처장님] 각급 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더민주당 공약 관련 확인**

○ **각급 법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대법원장님 업무보고,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체계 확인**

- 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확인

○ **의전**

-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의전 개선 방안 검토
- 발렛파킹 서비스 문제와 함께 검토

○ **국회 요구자료 목록 점검**

-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 배경은 무엇인지 항상 확인해야 함

○ **엑스폴더 등 자료 관리 시스템**

- 임○○,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체계적인 자료 보관,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
 - 과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함
 -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 시스템 벤치마킹 필요

○ **사법부의 핵심 과제**

- 법관 업무량 경감
 - 법관 증원, 재판 보조 인력 증원(로클럭 증원, 참여관 감원), 부판사/간이 판사 제도 신설, 사법보좌관 인력 증원, 사법보좌관 제도의 재편성
 - 참여관의 역할 강화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아야 함
 - 법관 증원보다는 재판연구원 증원을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함 ⇨ 법관 증원은 법관 위상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
 - ①단계 재판연구원 증원 ⇨ ②단계 법관 증원
- 법관 근무지 안정
 - 사무분담 장기화/특정법원근무기간 장기화, 지방 근무 회수 최소화
- 부장판사에 대한 대우
 - Seniority의 개념 ⇨ 부장판사에 대한 예우는 불가피
 - 향후 완전한 법조일원화(10년 경력)가 되기 전까지는 부장판사 개념 유지 필요 ⇨ 10년 경력 이상 법관으로만 구성되는 체제가 된다면 부장판사 개

- 넘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임
- 합의부 부장판사는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 ⇨ (관점의 전환) 로클럭 배정
 - 과거에도 단독부장에게는 예비판사 배정한 선례 존재
 - 전체 부장판사 중 단독 부장판사의 수 산출
 - 최근 5년간 단독부장판사의 수 산출
 - 부장판사 개념의 전환 ⇨ 합의부 재판장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 **“단독재판장 이상 + 독방 + 로클럭”**
- 법관에 대한 예우 강화
 - 법관들은 모두 1인 1실 사용
 - 사무국장과 법관 사이의 의전 서열 확립
 - 4)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의원 사이의 의전 서열과 유사
 - 법관에 대한 복지 아이템
 - 가상 인터넷 PC 지급
 - 심급구조 재설계
 - 간이사건 형식적 4심화, 실질적 3심제 (간이재판소 ⇨ 1심 법원 ⇨ 항소 법원)
 - 항소심의 사후심화
 - **고등법원을 사실상 상고법원처럼 운영 ⇨ 전제조건은 간이재판소(구법원) 및 부판사 신설**
 - 대법원 심리범위의 대폭 축소
 - 평생법관제 정착
 - 원로법관 제도 도입

○ 사법부의 핵심 과제

- 법관 업무량 경감
 - 가. 법관 증원, 재판 보조 인력 증원(로클럭 증원, 참여관 감원), 부판사/간이판사 제도 신설, 사법보좌관 인력 증원, 사법보좌관 제도의 재편성
 - 나. 참여관의 역할 강화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아야 함
 - 다. 법관 증원보다는 재판연구원 증원을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함 ⇨ 법관 증원은 법관 위상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
 - 라. ㉠단계 재판연구원 증원 ⇨ ㉡단계 법관 증원
- 법관 근무지 안정
 - 마. 사무분담 장기화/특정법원근무기간 장기화, 지방 근무 회수 최소화
- 부장판사에 대한 대우
 - 바. Seniority의 개념 ⇨ 부장판사에 대한 예우는 불가피
 - 사. 향후 완전한 법조일원화(10년 경력)가 되기 전까지는 부장판사 개념 유지 필요 ⇨ 10년 경력 이상 법관으로만 구성되는 체제가 된다면 부장판사 개념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임
 - 아. 합의부 부장판사는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 ⇨ (관점의 전환) 로클럭 배정
 - 자. 과거에도 단독부장에게는 예비판사 배정한 선례 존재
 - 차. 전체 부장판사 중 단독 부장판사의 수 산출
 - 카. 최근 5년간 단독부장판사의 수 산출
 - 타. 부장판사 개념의 전환 ⇨ 합의부 재판장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 **“단독재판장 이상 + 독방 + 로클럭”**
- 법관에 대한 예우 강화
 - 파. 법관들은 모두 1인 1실 사용
 - 하. 사무국장과 법관 사이의 의전 서열 확립
 - 1)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의원 사이의 의전 서열과 유사
- 법관에 대한 복지 아이템
 - 거. 가상 인터넷 PC 지급
- 심급구조 재설계
 - 너. 간이사건 형식적 4심화, 실질적 3심제 (간이재판소 ⇨ 1심 법원 ⇨ 항소법원)
 - 더. 항소심의 사후심화
 - 리. 고등법원을 사실상 상고법원처럼 운영 ⇨ 전제조건은 **간이재판소(구법원) 및 부판사 신설**
 - 머. 대법원 심리범위의 대폭 축소
- 평생법관제 정착
 - 버. 원로법관 제도 도입

○ 법원행정처 내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파악 필요

- 위원회 외부 위원 연락처도 파악 필요
- TF 현황도 파악 필요

○ 법원행정처 주최 각종 회의의 기록 남기기

- 회의 시작 전 사진 촬영 ⇨ 기획1실에서 사진실에 미리 통보

- 회의 내용은 녹음 ⇨ 녹음 파일 보관 (단, 보안 유지 필수)

○ 공익법무관 활용방안

- 사법부에 공익근무요원은 배치하면서, 공익법무관은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공익법무관과 점심
- 공익법무관을 행정심판 검토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는 방안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정보공개신청(이의신청) 등 검토에 활용하는 방안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익법무관이 파견되어 행정심판 검토 업무를 하고 있는지
- 국가소송업무, 법률구조업무, 자문업무로 나누어야 함
- 국가소송업무 및 자문 업무의 경우 큰 문제 없음 -> 행정심판, 정보공개신청이의 등으로 확대
- 법률구조업무 -> 시범적으로, 대규모 지방법원 본원에 공익법무관을 법률상담관으로 1명씩 파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공익근무요원 중 외국어 능통자, 국제변호사 자격 소지자 등 활용 방안

○ 조사위원 현황 파악

- 법원행정처 내 조사위원과 점심

(151215) 각급 법원 판결문 제공 시스템 전면 개편

- 주요 판결 선고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서. 주요 판결문 선고 당일 인터넷 공개 [기획2]

1) 정책의 주요 골자

(1)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사건 중에 **언론에 보도된 사건**은 부정적 또는 긍정적 보도 불문하고 **신속히 비실명처리**하여 **홈페이지에 해당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안

2) 정책 내용에 대한 검토

가) 기대효과

(1) 판결 전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욕구** 충족

(가) Facebook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익숙한 고학력 성인들은 인터넷으로 각종 정보의 **원본**을 직접 확인한 후, 링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유하려는 욕구가 강함 ⇨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받는 판결**에 대하여 **언론에서 보도되어 화제가 되는 바로 그 시점에 판결 전문을 직접 확인하려는 욕구** 존재

(2) 언론의 **부정확**하거나 **의도적으로 편집된 기사** 방지 가능

(가) **언론에 보도되어 화제가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인터넷으로 누구나 판결문을 쉽게 검색하여 기사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므로, 언론이 판결 내용을 부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의도적으로 편집·왜곡할 가능성이 낮아짐

(3) **정확한 1차 정보(판결 전문)**에 기초한 **토론** 유도 가능

(가) 정확한 1차 정보(판결 전문)를 통하여 판결의 결론뿐만 아니라 **판결의 이유와 근거**도 확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나) 정책 추진 타당성 및 필요성

(1) 정책 추진 필요성 인정됨

(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5. 9.부터 선고 당일 인터넷 공개 중

(나) **각급 법원**의 경우도 언론의 대상이 되는 주요 사건인 경우 선고 당일 인터넷 공개를 할 필요성이 큼

(2) **[보완 사항]** 선고 당일 인터넷 공개 대상 판결의 범위 확대 필요

(가) 언론에 보도된 후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판결문만 공개하는 것은 수동적 자세임

(나) 언론에 보도되기 前이라도, ▲ **“선고 전부터 언론이 관심을 갖는 주요 사건”**, ▲ **“출입기자로부터 판결문 제공을 요청받은 사건 중 객관적으로 기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판결문도, 적극적·선제적으로 인터넷 공개 실시

다) 정책 실현가능성

(1) **즉시 실현가능한 정책** ⇨ 다만,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보완 필요**

(가) **프로세스의 구체적 확립** ⇨ **업무담당자에 대한 확실한 책임 부여**

(나) **공보관의 구체적 업무처리 절차를 시간 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성**

(2) [1단계] 선고 전부터 언론이 관심을 갖는 주요 사건

(가) 각급 법원 공보관들은 언론이 관심을 갖는 **주요 사건 목록 관리**

(나) 해당 재판부는 주요 사건 선고 前 공보관에게 **선고일 통지**

(다) 공보관은 **출입기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선고 당일 주요 사건 **판결문을 비실명 처리하여 인터넷 공개**

- (3) [②단계] 출입기자로부터 판결문 제공을 요청받은 사건 중 객관적으로 기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 (가) 각급 법원 공보관의 경우 **출입기자로부터 판결문 제공을 요청받으면 비실명화** 작업을 하여 판결문을 제공하고 있음
 - (나) 출입기자로부터 판결문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공보관은 **비실명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사화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판결**은 언론보도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즉시 인터넷 공개**
- (4) [③단계] 언론에 보도된 사건
 - (가) 공보관은 즉시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서 **인터넷 공개**

3) 검토의견

- (1) 단기 추진 ⇨ 즉시 시행
 - (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5. 9.부터 선고 당일 인터넷 공개 중
- (2) 제도 도입에 법령상 근거 필요 여부 ⇨ 不要
 - (가) 각급 법원에서는 홈페이지에 이미 주요 판결을 공개하고 있음
 - ① 다만, **가정법원**의 경우 비실명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 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 (3) 예산 소요 여부 ⇨ 不要
 - (가) **다만, 비실명화 작업을 지원할 인력 보충 필요**
- (4) 시행 예상 시기: 즉시

(151215) 법원소식지 전면 개편

- ◆ 법원사람들 ⇨ 별로 보지 않음

- ◆ 법원소식지를 인터넷 중심으로 개편
 - Facebook 등 인터넷에서 소비될 수 있는 매체로 재편
 - 각종 칼럼의 인터넷 버전을 만들어야 함

- ◆ 정책 소개란을 만들어야 함
 - 행정처 심의관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칼럼 게재
 - 소식지에 게재된 칼럼은 외부 언론에도 게재

(151215) 판결문 전면 공개 필요

◆ 부작용

- 법원의 정보를 외부에 빼앗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는 함
- 개인정보보호책임에 대한 부담감

◆ 순작용

- 변호사들의 변론 능력 강화
- 판결문의 공론화 ⇨ 법원의 사회적 지위 강화

(151215) 법관들에게 외부에서 법원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재택근무와는 구별됨 ⇨ 야간, 주말 등 초과 근무를 집에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업무 효율 향상 가능
- 실제로 일부 판사 등은 아이디 부여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매우 편리하다고 함

◆ 원거리 출퇴근 하는 법관들의 야간 및 주말근무에 대한 보완책

- 주거지가 서울이고, 근무 법원이 수원인 법관, 반대로 주거지가 수원이고 근무 법원이 서울인 법관들의 경우 과중한 업무로 주말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
- 집에서 법원서버에 연결하여 근무할 수 있다면, 주말 출퇴근의 부담이 줄어들어 법관들의 사기가 획기적으로 고양될 것으로 보임

◆ 지방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보완책

- 법원, 법관별로 편차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 처리를 위하여 주말에도 지방에 머물거나, 주말 중 하루 정도 지방에 미리 내려와서 출근하는 경우 다수

◆ 외부 사례

-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의 경우 V-Card에 의한 접속 허용
- 삼성의 경우 상무로 승진한 경우 자택에 회사 서버에 접속 가능한 컴퓨터 설치

◆ 부작용

- 정보 유출 문제
 - (1) 검색한 정보의 내용, 접속장소, 접속시간 등을 추적함으로써 사후 방지 가능
 - (2) 법관들에게 정보 유출 시 징계 가능성 등을 경고하고, 컴퓨터 화면에 모든 열람 내역이 기록되고 있다는 경고 문구 기재
- 재택근무 허용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대응 문제
 - (1) 소속 법원에서 직접 근무할 필요성 등에 대한 설득 논리 마련 필요

(150909) 사법질서보호

- 전국 법원 검색대, 엑스레이투시기 현황 점검

[정○○ 컨설턴트 이메일 2015. 6. 30.]

오늘 동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 방청을 하고 왔습니다. 법정에 입장을 하는데, 검문검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습다. 공익요원이 입구에 앉아 있었지만, 금속탐지기는 작동을 하지 않았고 (첨부된 사진처럼 전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X-Ray 투시기는 아예 없더군요. (동부지법 3호 법정입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그 공익요원마저도 자리를 비우고 없었습니다. (13:20경) 아무런 제지 없이 형사법정에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것, 너무 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틈만 나면 법정의 안전 보호를 위한 각종 보고와 제안을 드렸습다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느꼈습다.

물론, 서울행정/가정법원이나 북부지법처럼 검문검색을 충실히 수행하는 법원도 있습다만, 올해 방문한 남부지법, 중앙지법에서는 아주 형식적으로 검문검색이 이뤄지고 있었습다. (중앙지법의 한 검색요원은 휴대전화로 바둑을 두느라 정신이 팔려 X-Ray 화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이런 상황이라면, '제2의 석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실한 검문검색은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원의 건강한 권위감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기 때문에 한시 바빠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의 담당 업무가 아니라면, 법원행정처에서 담당하시는 분께 이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법원의 건강한 권위감을 보호 또는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자꾸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150905) 법정언행 개선 관련 아이디어

■ 모범 동영상 활용 계획

▶ 현황

- 2014. 10. 모범동영상 DVD 제작 완료
- 2014. 10. 사법연수원 “법정언행 개선과 재판운영을 위한 법관 세미나”에서 참가 법관에 게 DVD 배부

▶ 모범 동영상 DVD 전국 법원 배포

- 실장님께 보고서로 보고
- 촬영 대상 판사님의 동의 받기 ⇨ 기획2심의관
- 11월 초순경 즉시 배포
- 소요 예산 확인 ⇨ 단가 확인 필요

▶ 모범 동영상 DVD 법관연수 배포

- 법정언행 세미나, 형사재판장 세미나, 초임단독
- 민사, 형사로 나누어서 편집 필요
- 자막에 오기, 띄어쓰기 잘못된 부분 일부 있으므로 편집할 때 수정 필요

▶ 법정언행 모범동영상 온라인교육(휴넷) “사이버연수원”에 게시

- 모바일 시청 가능

▶ 법정언행 모범동영상 사법연수원 이러닝센터에 게시

- 15분 단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8주 연속 게시
- 사법연수원 예산으로 제작
- 조○○○ 교수와 김○○ 판사, 박○○, 정○○ 변호사

■ 문제 사례 음성파일 업데이트

- 10. 30. 법정언행 개선 세미나 2주일 前(10. 16.)까지 업데이트 완료(법원의 날 행사 동영상 제작업체 예산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듯)

■ 전국 법원의 법정언행 개선 노력을 모은 종합보고서 발간 (최근 3년간)

- 법원행정처의 법정언행 개선 노력
- 사법연수원의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강좌 내역
-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발간
- 전국 법원(고등, 지방, 가정)

■ 법정언행 관련 언론기사 모아서 강의자료로 제공

■ 법관윤리 교육에 법정언행 관련 교육이 포함되는지 여부

■ 잘못된 법정언행에 따른 진정, 인권위 제소, 징계, 언론보도 절차 등 점검

- 잘못된 법정언행이 문제가 되어 상황이 커지는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명

- 자신이 생각하기에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 경우 대처 방법 설명(법정, 직 후, 문제가 터진 후로 나누어서)
- 잘못된 법정언행에 대한 국회,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설명 ⇨ 국회 요구자료 목록, 국정 감사 및 청문회 질문사항 목록

▣ [참고자료] 법정언행 관련 국회에 제출한 각종 자료 모으기

(150905) 정책연구용역 관련 아이디어

- 정책연구용역 목록을 종합법률정보, 열린법률백과(법원도서관) 등에 게시하는 방법
- 정책연구용역을 판사, 커뮤니티에게 맡기는 방법
-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 제고 방안 ⇨ 사법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
 - 법관연수 자료로 활용, 매뉴얼 작성, 실무제요에 반영, 토론회 자료로 활용 등
- 법원홈페이지 공개 여부 결정 등에 관한 기준 확립
 - 매우 중요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기준임

1.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양식 표준화

-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양식표준화
-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양식표준화 벤치마킹
- 정책연구용역에 사법행정간행물 번호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부여해야 한다면 부여하는 방법
- 홍디자인과의 협의

- 사법정책연구원에 근무하시는 기획2실 근무 경험 있는 과장님께 양식표준화에 대해 문의

2. 정책연구용역을 법원도서관이 운영하는 종합법률정보, 열린법률백과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법무부 등 행정부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어떻게 공개 및 활용하고 있는지, 공개에 제한 사항은 없는지 (PRISM)

1.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양식 표준화 관련 다른 부처 벤치마킹

- 국회 예산정책처 (첨부 PDF 파일 참조)
- 국회 입법조사처
- 법무부 (Prism 홈페이지 확인해 본 결과, 양식이 표준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2.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양식 표준화 관련 쟁점

- 발주처인 법원행정처가 인쇄를 일괄하여 특정 업체에 맡길 것인지 여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현황 및 노하우 확인)

- 표지 양식만 표준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용의 양식도 표준화하고 있는지

- 결과보고서를 A4로 하는지 아니면 일반 출판도서 양식(B5?)로 하는지

* 사법행정간행물 번호 부여 여부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검토

(150905) 1인 시위 금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활성화 관련 아이디어

- ▣ 3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전국 법원 공문시행 ⇨ 불법적인 1인 시위 현황 파악
- ▣ 3개월에 1회씩 전국 법원 공문시행 ⇨ 불법적인 1인 시위의 피해자인 법관의 소송대리인 신청 의사 유무 확인하고, 신청서 송부

공문시행

1. 소속 법관 및 법원구성원을 상대로 한 1인 시위 중 위법성이 중대 명백하여 불법적인 1인 시위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목록
2. 위 1항의 불법적인 1인 시위의 피해자인 법관의 소송대리인 신청의사 유무, 신청의사 있을 경우 신청서 송부

(150906)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활성화 아이디어

-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신청 전이라도 소송대리인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인지대 1,000원 납부,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가 번거로움 ⇨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법지원실에 확인
 -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원고가 재항고를 하여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감으로써, 피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스트레스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 발생
 - 담당 재판장이 원고로부터 기피신청을 받거나, 각종 진정, 민원의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하여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직권으로 발령하기를 꺼림
 - 국회에서 예산을 배정받을 때, 부당소송 사건 수 X 8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배정받음 ⇨ 예산을 배정받을 때,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사전 절차로 예정하지 않았음에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사전 절차로 예정함으로써 제도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고, 예산 집행 실적을 부진하게 할 필요는 없음 ⇨ 만일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위와 같이 전용할 필요성이 큰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전년도 실적 확인)
- ⇨ 일단은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신청 前이라도 곧바로 소송대리인 선임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원스탑 서비스 도입)

- 전국 법원에 부당소송 사건 목록 확인 위하여 공문시행할 때, 부당소송의 피소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소송대리인 선임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메일 발송
 - 이메일 발신인은 조○○ 사무관

(150906) 연임법관연수 개선방안 아이디어

- 연임법관 연수 기간, 연가 사용 여부, 휴일과의 연계 가능 여부 등 기준 명확화 ⇨ 내규, 예규 마련
- 연임법관 연수를 다음 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 (1) 해외연수 ⇨ 예산실에 확인
 - * 다음 년도 정기인사 전까지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예산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체크리스트 (2018. 7. 31.)

- [실장님] 법률안 검토의견 회신
- [시○○] 주요업무집행결과
- [차장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결과 보고서 활용 현황 파악
 - ▣ 연구주제 관련 정책 추진 경과 및 현황
 - 연구 주제 관련 정책 결정 사항 및 연구보고서 내역 등 정리
 - 연구 단계에서 담당 심의관이 기존 자료를
- [차장님] 사법행정위원회 구체적 실행 계획
 - 실무지원단 구성
 - 사법행정위원회 코트넷 전용 소통 공간 설립 ⇨ 전정국에 협조 요청
- [처장님] [차장님]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개편 방향
- 신임법원장 간담회 정리
- 윤○○ 부장님 지시사항 - 법관연수지원팀 활동 경과 정리
- [차장님] 법관 정년퇴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차장님] 부정적 언론 보도 대응 방안 - 구체적 실행 계획 작성
- [부장님]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 소지 사무관 재판연구관 근무 방안
- 보안컨설팅 TF
- 법정언행컨설팅 개선방안, 만족도 설문 조사
 - 설문 문항 작성 (1안) 전산실에 의뢰, (2안) 기획법관에게 의뢰
- 소통의 창 수신인 - 기획조정실장님 보고
- 초임지법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장님 격려 오찬에 대한 개괄적인 구상 보고
 - 차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비서실장님께 구상 보고 드린 후, 구상에 대한 개괄적인 허가를 받으면 구체적인 계획 작성하여 상신
 - 인사실에 개략적인 인원 알려 달라고 부탁 (2016년, 2017년)
- 정책연구용역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 사법정책연구원 기본과제 신청

○ 2016년도 주요 행사 일정표(책받침 형태) 제작 완성 보고

○ 법률안 의견 회신

○ 법원행정처 발간 책자 목록 정리

- 1. 4.(월) 법관연수지원팀

○ 법관연수에 반영해야 할 사법행정의 주요 과제 추출

- 1. 4.(월) 법관연수지원팀

○ 김○○ 부장님 -> 발표비 50만 원 지급

○ 정책연구용역

- 교수와 법관의 공동 정책연구용역 수행 가부
- 활용 현황 파악

(151121) 차장님 지시사항

법원 커뮤니티 현황

일부 커뮤니티의

폐쇄형 커뮤니티의 발전적 해체 ⇨ 민법상 사단법인화 ⇨ 법원행정처를 감독 관청

행정판례연구회와 동일하게

재정적 지원은 각종 연구용역으로

법원 커뮤니티 전환

형사법연구회 - 형사수석부장

사법연수원LEC

검찰의 경우, 2007년도 형사소송법학회

법률 개정 국면

*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재판 실무에 접목하여 활용했는지 여부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총서 ⇨ 유용한 자료들이 많음

- 해당 실국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책자발간 (대검찰청 ⇨ 신경향)

○ [처장님] 심리상담프로그램 관련 이○○ 국장 이메일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권○○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정책연구용역 활용 현황 파악

○ 법관연수 운영협의회 논의 결과 정리 및 보고

○ 법원 보안 TF 일정 확인

○ 기획총괄심의관님 ⇨ 시험출제위원

- 각종 시험 출제위원 (이○○ 부장님)
- 기획교수실에 확인하여 2015년도 시험 출제에 참여하신 강의교수님들 명단 확인
- 강의를 나갈 수 있는 교수님들의 여력 확인
-

○ 법관연수 관련 아이디어 보고

-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과 법관연수 연계 방안
- 법원행정처 기본계획, 법원장회의 자료 분석 ⇨ 아이템 발굴

<p>◆ 주요 정책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언행 개선 <p>◆ 독립 강좌 개설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불필요 - 독립강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법관연수 반영 방법 <p>◆ 강좌를 추가할 연수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임법관연수/ 경력별연수/ 재판장연수/ 재판실무연수/ 전문분야연수 - 온라인연수 <p>◆ 법관연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책자, 연구 성과, 각종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p>◆ 추천강사</p>

○ 법관연수 건의사항 취합

- 그동안 보고서에서 “법관연수”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던 내용들

○ 김○○ 실무관에게 떠나기 전에 업무인수인계 매뉴얼 만들고 떠나라고 지시

⇨ 기획2심의관에게 결재 받을 것

○ 공익법무관 활용방안

- 사법부에 공익근무요원은 배치하면서, 공익법무관은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공익법무관과 점심
- 공익법무관을 행정심판 검토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는 방안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정보공개신청(이의신청) 등 검토에 활용하는 방안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익법무관이 파견되어 행정심판 검토 업무를 하고 있는지
- 국가소송업무, 법률구조업무, 자문업무로 나누어야 함
- 국가소송업무 및 자문 업무의 경우 큰 문제 없음 -> 행정심판, 정보공개신청이의 등으로 확대
- 법률구조업무 -> 시범적으로, 대규모 지방법원 본원에 공익법무관을 법률상담관으로 1명씩 파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개정해야 함

○ 정책연구용역 [처장님 지시사항]

- 수의계약 체결 가능 계약
- 교수들의 경우 실무와 유리된 현상
- 법관 커뮤니티나 사법정책연구원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151024) 김○○ 부장님, 김○○ 판사님께 질문

-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법제도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보면, 재판중계 제도 등에 관하여 외국의 사례를 방대하게 조사하였는데,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당하였고, 어떻게 부탁하여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질문
- 법원행정처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들(홍보심의관실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현황, 공개변론이 20분 지연 송출되고 있다는 점 등)은 각 실국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였는지 질문

=====

○ 처장님 말씀 [법원 友軍 만들기 전략]

▣ 아래 사람들에 대한 명단 확보 후 사후 관리 방안(연하장 보내기, 사법논집 보내기, 법원소식지 보내기 등) 마련할 것

- 조사위원(국제실, 정책실, 지원실)
- 비법관재판연구관
-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위원
- 외교부 외무관 등

▣ 위원회, 상임조정위원, 국선전담

○ 차장님 지시사항 - 1소위 중요 법률안 보고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수석재판연구관님 지시사항 이행

○ 이○○ 판사님께 질문

- 이행권고결정 권한을 사법보좌관에게 이양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16402)을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하도록 임내현 의원을 접촉, 설득한 구체적 과정
- 전해철 의원이 2015. 7. 10.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16056): 당사자의 소송진술방식 개선
- 의원입법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차장님] 법정언행컨설팅 개선방안 검토할 것

- 구체적으로는, 강의형 연수의 개선방안
- 차장님도 인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강의형 연수를 수강한 사실이 있음

○ [부당소송] 윤○○ 부장님

○ 법정언행 모범 동영상 온라인 게재

○ [등기국장님] 공탁지원금 관련 대응 방안 → 사법발전재단 현황 면밀히 파악할 것

- 7/21 다시 지시
- [등기국장님] 공탁금기금운용위원회 규칙 제정
- [차장님] 행정심판규칙 정비
- [실장님] 부당소송, 1인 시위 활성화 방안, 매뉴얼 업데이트, 홍보 ⇨ 예산 사용 관련 점검 필요
- [실장님]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건수 없으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총무과에 알리는 방안
 - 매년 공문 시행
- [실장님]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교수님 정책연구용역 커뮤니티 가입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열람 방법
- [실장님] 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 방안 ⇨ 연수법관 부과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

○ [처장님] 서○○ 같은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처장님] 재항고사건, 행정심판사건, 진정/민원사건
- [실장님] 민원서류 접수 가능한지 여부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연구관실과 상의 ⇨ 소권 남용 논리 등
- 예)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한 대법원 2014두36358 판결 등
- 해외연수법관 수시과제 부과
- 정책연구용역 발주
- 사법정책연구용역

- [실장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관련 피해 사례 ⇨ 대형 로펌 확인
 - 이○○, 김○○○, 박○○에게 부탁
- [실장님] 김○○ 부장님 요청사항 - 의무이행소송 관련 스토리화
- 사법발전재단 : 함○○ 부장판사님(대등재판부, 재판연구원 매뉴얼)
- [실장님] 행정심판위원회 간소화 방안
- [실장님 말씀] 법관연수 관련 Assessment 활용방안 적극 검토
 - 법원장 보임에 활용 가능함
- [실장님 말씀] 전국 재판부로부터 문제 있는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
- 연임법관연수 준비
 - 김○○ 형님이 부탁하신 국내연수 관련 예산 증액 요청 (조○○ 사무관님)
 - 기획총괄부장님 명의로 연수보고서 제출 독촉 메일 발송
- 공공데이터 관련 캠프 현황 파악 보고

○ 석사과정 위탁 교육 개선 방안 마련

- 법관 : 일반직 비율을 50:50
- 법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석사과정 적극 발굴
- 법관들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와 같이 근무평정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
- 지원자가 적거나, 일반직 위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예산 불용 처리 ⇨ 예산 항목이 수
용비인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실장님 말씀] 석사 과정 후기 선발 여부도 검토

○ 부당소송 관련 ⇨ 법원장 간담회 내용 검토 ⇨ 즉시 시행할 내용 시행착수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 검토

- 불필요한 회의 불참 가능 여부

○ 지금까지의 모든 이메일 확인 ⇨ 캘린더 및 업무계획표에 반영

○ 시○○ 판사님 작년도 발송 이메일 전달받기

2015. 3. 3. (화) 업무계획표

- [긴급] 법관연수 TFT 구성안 수정안 보고
- [긴급] 보도자료 보고
- [긴급] 김○○ 부장님께 답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님, 김○○ 부장연구원님)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불필요한 회의 불참석 가능 여부) 검토
- [중요] 정책용역 관련 (김○○ 심의관)
 - 2/24(화) 접수
 - 3/2 검토, 통보

- 정책용역위원회 일정 잡기 (조○○ 사무관)
 - 2/24 접수
 - 3/2 검토
 - 3/3 통보

- 행정심판청구서 업무
 - 행정심판위원 선정 안내 3/3(화)
 - 신임 행정심판위원에게 행정심판 안내서 작성, 송부
 - 검토보고서 3/6(금) 접수
 - 검토보고서 검토 3/7(토), 3/8(일)
 - 검토보고서 김○○ 부장님께 발송 3/9(월)

- 김○○ 형님이 부탁하신 국내연수 관련 예산 증액 요청
 - ⇒ 조○○ 사무관님에게 검토해 볼 것 지시
- 시○○ 판사님 작년도 발송 이메일 전달받기
- 법원행정처장님께 3/18 법관연수 안내자료 드리기
 - 처장님 특강 수행할 필요 있는지 여부 확인 (비서관, 사법연수원 교수)
- 법원문화연구반 운영 결과 중 기획2심의관 업무에 대한 회신
- 법률안 검토 회신
 - 3/7(토) 검토, 3/8(일) 보고
- 프린터 토너 교체
- 3/4(수) 법원장 간담회 가기 전에 전산실에 컴퓨터 교체 요청 (로그인 아이디 통보, 사전에 각종 자료 백업)

2015. 3. 9. (월) 업무계획표

■ 긴급

- 실장님께 일일 보고
- 정책용역 ⇨ 이메일 발송
 - 정책용역위원회 일정 잡기 (조○○ 사무관) ⇨ 위원 명단 확인
 - 정책용역위원회 안내 이메일 발송
 - 김○○ 심의관, 조○○ 심의관 문의에 답변
- [긴급] 법관연수 TFT 구성안 확정 여부 확인 후 즉시 TFT 구성 착수
- 전국 법원장 간담회 회의록 작성 완료 및 보고
 - 시○○ 판사님께 회의록, 착안사항을 작성하여 결재 받는 범위, 이메일 회람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
- 처장님 3/18 법관연수 준비
 - 법원행정처장님 특강 및 오찬에 따라갈 심의관의 범위 확정. 그 기준 확립
 - 노○○ 교수님, 비서관님께도 확인(오찬시의 유의사항)
- 차장님 3/19 만찬 준비
 - 차장님 만찬 따라갈 심의관의 범위 확정. 그 기준 확립. 가사소년심의관? 기획제2심의관?
 - 담당: 송○○ 교수님
- 행정심판청구서 업무
 - 정○○ 부장님, 장○○ 변호사님께 행정심판기일 3/23(월) 오후 2시 참석 가능 여부 문의
 - 신임 행정심판위원에게 행정심판 안내서 작성, 송부
 - 검토보고서 3/6(금) 접수
 - 검토보고서 검토 3/9(월) ~ 3/12(목)
 - 검토보고서 김○○ 부장님께 발송 3/13(금)
- 3/9 부장회의 발표 준비 & 사실심충실화 TF 일정 확인
 - 조○○ 판사에게 “당사자 최종진술권” 관련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에 대해 확인
- 3/10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직 연구위원 선발 관련 안내자료 사법정책실장님, 총괄심의관님께 모두 보냈는지 여부 확인 ⇨ 김○○ 판사님

■ 덜 긴급

- 사법정책연구원 관련 김○○ 판사님이 보내신 이메일 관련
 - 이메일 회신
- 3/9까지의 모든 이메일 확인 ⇨ 캘린더 및 업무계획표에 반영
- 장○○ 판사님 1인시위금지가처분 제기 여부 의사 확인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관련 검토
 - 3/16 만기이므로 반드시 주초에 검토를 마무리 해야 함
- 최○○ 판사 질문에 대한 답변
 -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조○○ 사무관에게 확인
- 연임 법관 연수 관련
 - 진행 상황 확인
- 김○○ 형님이 부탁하신 국내연수 관련 예산 증액 요청
 - ⇨ 조○○ 사무관님에게 검토해 볼 것 지시
- 법정언행 1:1 컨설팅 사업 개시 ⇨ 1:1 컨설팅 업체 공모 착수
- 부당소송 관련 ⇨ 법원장 간담회 내용 검토 ⇨ 즉시 시행할 내용 시행착수
- 전산실에 컬러프린터와 연결 요청
- 스캐너와 내 이메일 계정 연결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불필요한 회의 불참석 가능 여부) 검토
- 시○○ 판사님 작년도 발송 이메일 전달받기 [끝]

2015. 3. 10. (화) 업무계획표

■ 긴급

- 이○○ 판사 질문에 대한 답변
- 대전지방법원 허○ 판사님 질문에 답변
- 박○○ 판사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
- 실장님께 일일 보고
- 정책용역 ⇨ 이메일 발송
 - 정책용역위원회 일정 잡기 (조○○ 사무관) ⇨ 위원 명단 확인
 - 정책용역위원회 안내 이메일 발송
 - 김○○ 심의관, 조○○ 심의관 문의에 답변
- [긴급] 법관연수 TFT 구성안 확정 여부 확인 후 즉시 TFT 구성 착수
- 전국 법원장 간담회 회의록 작성 완료 및 보고
 - 시○○ 판사님께 회의록, 착안사항을 작성하여 결재 받는 범위, 이메일 회람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
- 처장님 3/18 법관연수 준비
 - 법원행정처장님 특강 및 오찬에 따라갈 심의관의 범위 확정. 그 기준 확립
 - 노○○ 교수님, 비서관님께도 확인(오찬시의 유의사항)
- 차장님 3/19 만찬 준비
 - 차장님 만찬 따라갈 심의관의 범위 확정. 그 기준 확립. 가사소년심의관? 기획제2심의관?
 - 담당: 송○○ 교수님
- 행정심판청구서 업무
 - 정○○ 부장님, 장○○ 변호사님께 행정심판기일 3/23(월) 오후 2시 참석 가능 여부 문의
 - 신임 행정심판위원에게 행정심판 안내서 작성, 송부
 - 검토보고서 3/6(금) 접수
 - 검토보고서 검토 3/9(월) ~ 3/12(목)
 - 검토보고서 김○○ 부장님께 발송 3/13(금)
- 3/9 부장회의 발표 준비 & 사실심충실화 TF 일정 확인
 - 조○○ 판사에게 “당사자 최종진술권” 관련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에 대해 확인
- 3/10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직 연구위원 선발 관련 안내자료 사법정책실장님, 총괄심의관님께 모두 보냈는지 여부 확인 ⇨ 김○○ 판사님

■ 덜 긴급

- 사법정책연구원 관련 김○○ 판사님이 보내신 이메일 관련
 - 이메일 회신
- 3/9까지의 모든 이메일 확인 ⇨ 캘린더 및 업무계획표에 반영
- 장○○ 판사님 1인시위금지가처분 제기 여부 의사 확인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관련 검토
 - 3/16 만기이므로 반드시 주초에 검토를 마무리 해야 함
- 최○○ 판사 질문에 대한 답변
 -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조○○ 사무관에게 확인
- 연임 법관 연수 관련
 - 진행 상황 확인
- 김○○ 형님이 부탁하신 국내연수 관련 예산 증액 요청
 - ⇨ 조○○ 사무관님에게 검토해 볼 것 지시
- 법정언행 1:1 컨설팅 사업 개시 ⇨ 1:1 컨설팅 업체 공모 착수
- 부당소송 관련 ⇨ 법원장 간담회 내용 검토 ⇨ 즉시 시행할 내용 시행착수
- 전산실에 컬러프린터와 연결 요청
- 스캐너와 내 이메일 계정 연결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불필요한 회의 불참석 가능 여부) 검토
- 시○○ 판사님 작년도 발송 이메일 전달받기 [끝]

인사모 1월 모임 논의 정리 내용

1. 법원행정처장의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를 위한 의견 수렴' 방안 (2015. 12. 8.자 코트넷 주요공지사항 게시글)에 관하여

- 법원행정처에서는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상시화·제도화하기 위하여 전국 법관들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한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함.
- 그간 법관 신규임용, 법원이원화, 상고법원 추진 등의 과정에서 법관들의 의견수렴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위 방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임.
- 다만,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문화개선, 재판제도발전, 법관윤리, 사법정책기획 등의 분야별로 법관 대표 위원회에서 심의 가능한 안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안건에 구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제와 프레임을 처음부터 새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법원행정처의 의제설정을 막을 수는 없고,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선결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반론도 제기됨.

2.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확보와 판사회의의 실질화

- 위원회의 구성은 법원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반영하여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함.
-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적어도 의장과 간사, 과반수 위원은 지역·심급·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판사로 위촉해야 한다는 점에는

반대의견 없었음.

- 대표 선출 및 선출된 대표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판사회의가 정례화, 실질화될 필요 있음. 일부 법원에서 직급별, 업무별 판사회의의 정례화를 위한 내규개정 작업이 진행됨. 내규 정비 및 통일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준내규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 있었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차회 모임에서 논의기로 함.

3.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약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결과

-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행정권은 대법원장에게 있고, 판사회의는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실정법상 판사가 사법행정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과 그 위임을 받은 법원장 등에게 집중된 이상, 그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으면 법관과 재판의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감시·견제하기 위하여 판사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부합하는 것임.
- 많은 판사들이 회의 참석조차 쉽지 않을 정도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
→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지 않는 판사들도 대부분 사법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제거해야. 또한 판사회의의 활성화는 결국 업무여건의 개선으로 연결됨. 실제로 한 지방법원에서 매월 통계를 돌리면서 판사들에게 사건처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판사회의의 개최에 즈음하여 이를 중단한 적이 있었다고 함.
- 판사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외부에 집단행동으로 비춰질 소지
→ 전체 판사회의 또는 직급별 판사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으로 해결 가능.

4. 사무분담 확정에 있어서의 법관참여

- 법원 내 사무분담이 사법행정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 없음.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인데(제4조 제2항), 이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있음.
- 인사이동 직후에 사무분담이 결정되므로 소속 법원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전입법관이 사무분담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그러나 인사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합하는 희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원칙을 합의하여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구체적인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법원장의 자의적인 인선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의견 일치. 더불어 영장전담, 형사, 파산 등을 특수한 보직으로 인식하는 관행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과거에는 추첨을 실시하거나 기수, 나이에 따른 순번을 확정된 후 '홀짝'에 따라 민·형사 등 재판부에 번갈아 배치한 사례가 있었다고 함. 사무분담을 정하기에 앞서 평판사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공유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2015. 6. 15. 업무계획표

- 장○○ 판사님
- 박○○ 판사님
- [총괄부장님] 6/24까지 사법정책의 주요 현안 파워포인트 업그레이드
- [차장님] 행정심판법 규칙 정비
- 정책연구용역 날짜 잡기
- 법정언행컨설팅 컨설턴트 교육일정 잡기
- [실장님] 김○○ 부장님 요청사항 - 의무이행소송 관련 스토리화
- [처장님] 처장님 주최 만찬 수행 심의관 보고
- [부당소송] 서울북부지법 박○○ 판사님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교수님 정책연구용역 커뮤니티 가입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열람 방법
- [법제처] 정책연구용역
-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직 연구위원 사직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안, 사직 후 임용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 [실장님] 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 방안 ⇨ 연수법관 부과과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
- [처장님] (6월 분기실국장 회의 지시사항) 법학전문대학원 대책 마련
- [실장님]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건수 없으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총무과에 알리는 방안
- [TF] 대법원장님 보고 관련, 박○○ 부장님 지시사항
- [실장님] 법관연수 운영협의회 관련 ⇨ 6/15(월, 1안), 6/16(화, 2안)
 - 1) 새로운 법관연수의 시대가 열렸는데, 예산상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 2) 법관연수 운영기구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관연수 기획교수실이 현재의 방안대로 하면 심정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음
 - 연수원장님이 새로 부임함에 따라서 지금 안에 대하여 반발하거나, 조직 운영상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음
 - 참고 사례: 기획법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무과가 각급 법원의 행사를 수수방관하는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있음 ->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서 면밀한 조직 설계 필요
 - 운영협의회는 정책심의기능을 담당하는 협의기구로서 다음 연도 연수계획 심의
 - 연수원 기획교수실과 법관연수 지원팀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유기적인 협조관계 구축,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 원칙적으로 법관연수의 기획과 집행은 연수원 기획교수실에서 담당해야 함
- 법관연수 기본계획의 수립도 법관연수 기획교수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
- 법관연수 지원팀은 자문역할만 하고, 의사결정권한은 없도록 해서, 새로운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 연수프로그램의 변화를 모색, 전년도 연수시행결과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연수프로그램 수립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
- 운영협의회와 기획교수실, 지원팀은 약화된 3원화 조직
- 지원팀은 독립된 구성이라기보다는 서포트 기구임
- 구체적인 운영의 예
- 2016년도 법관운영계획 수립
- 연수원장님 결재 전에 법관연수운영협의회를 열어야 함 ⇨ 10월 이전에 법관연수계획의 초안을 만들어서 안건으로 올려야 함
- 3/4분기까지의 연수결과만 분석하여 피드백을 받아서 해야 함
- 11월에 법관연수운영협의회 개최 - 연수원장님 결재가 나면 - 형식적인 결재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 복지총괄조직신설 TFT - 기획(연수원), 심의(운영협의회), 집행(지원, 아이디어, 조언)
- 완화된 3원화 조직
- 기획, 집행은 분리되어서는 안 됨 - 연수원

○ [실장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관련 피해 사례 ⇨ 대형 로펌 확인

- 이○○, 김○○○, 박○○에게 부탁

○ [실장님] 문○○ 판사님 부탁 사항 (위원회 수당)

- 50만 원 정도로 하라고 지시

○ [처장님] 심리상담프로그램 관련 이○○ 국장 이메일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권○○ 심의관님과 상의

○ [실장님] 법정언행컨설팅 기본계획 보고, 계약체결 관련 보고

○ [처장님] 사법정책연구원 - 전문직 연구위원 사임 시 수시 선발할 것인지, 정규 선발할 것인지 여부

○ [실장님] 사법정책연구원 - 전문직 연구위원 사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실장님] 부당소송, 1인 시위 활성화 방안, 매뉴얼 업데이트, 홍보 ⇨ 예산 사용 관련 점검 필요

○ [실장님] 법정언행 모범 동영상 배포 및 온라인 게재

○ [실장님] 법정언행 법관연수 유지 여부 사전 점검 필요

○ [실장님] 정책연구용역 예산 사용 관련 상황 점검

○ [등기국장님] 사법발전재단 수익 사업 가부, 공탁지원금 관련 대응 방안

○ [실장님]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사법발전재단 : 함○○ 부장판사님

○ [차장님] 다른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실제 운영 상황 정리

-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 실제 참석하는지 여부)

○ [실장님] 행정심판위원회 간소화 방안

○ [처장님] 서○○ 같은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처장님] 재항고사건, 행정심판사건, 진정/민원사건
- [실장님] 민원서류 접수 가능한지 여부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연구관실과 상의 ⇨ 소권 남용 논리 등
- 예)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한 대법원 2014두36358 판결 등
- 해외연수법관 수시과제 부과
- 정책연구용역 발주
- 사법정책연구용역

○ [실장님 말씀] Assessment 활용방안 적극 검토

- 법원장 보임에 활용 가능함

○ [실장님 말씀] 전국 재판부로부터 문제 있는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

○ 연임법관연수 준비

- 김○○ 형님이 부탁하신 국내연수 관련 예산 증액 요청(조○○ 사무관님)
- 기획총괄부장님 명의로 연수보고서 제출 독촉 메일 발송

○ [총괄부장님] 사법연수원 오찬/만찬 일정 확정

○ 법관연수 TFT 이○○ 판사님과 상의 ⇨ 점심

○ 공공데이터 관련 캠프 현황 파악 보고

○ [실장님 말씀] 석사 과정 후기 선발 여부도 검토

○ 석사과정 위탁 교육 개선 방안 마련

- 법관 : 일반직 비율을 50:50
- 법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석사과정 적극 발굴
- 법관들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와 같이 근무평정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
- 지원자가 적거나, 일반직 위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예산 불용 처리 ⇨ 예산 항목이 수 용비인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사법정책연구원 관련 김○○ 판사님이 보내신 이메일 관련

- 과제심의위원회
- 수시부과과제 (장○○ 판사님)
- 검토 완료 후 기본적인 정책 방향 확립

○ 사법연수원

- 오만찬 일정 확인

- 법원행정처장님 특강 및 오찬에 따라갈 심의관의 범위 확정. 그 기준 확립
- 부당소송 관련 ⇨ 법원장 간담회 내용 검토 ⇨ 즉시 시행할 내용 시행착수
- 이○○ 총괄심의관님과 상의 : [부당소송] 대구지법 기획 이○○ 판사 질문에 대한 답변
 - 부당소송으로 인하여 소규모 지원에서 합의부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대책
- 최○○ 판사 질문에 대한 답변
 -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이○○ 계장에게 확인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불필요한 회의 불참석 가능 여부) 검토
- 지금까지의 모든 이메일 확인 ⇨ 캘린더 및 업무계획표에 반영
- 시○○ 판사님 작년도 발송 이메일 전달받기

2015. 6. 24. 업무계획표

- 6/29까지 박○○ 부장님께 요약본, 간략 요약본 드리기
- 6/28(일) 종합보고서 POD 작업
- 부당소송 관련 장○○ 판사님께 연락
- 연수원의 공통 인식 확립 ⇨ 7월초부터 차질 없도록 추진
- 백○○ 부장님 환송장소 예약, 기념품 준비
- 신입법관연수 ⇨ 실무적으로 실천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
-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 폐지 여부 ⇨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협의
- 법관연수TF 조직구성 방안 사법연수원에 공문 시행 ⇨ 신○○ 교수님께 확인
- 처장님 만찬 안내자료 보고
- [등기국장님] 공탁지원금 관련 대응 방안
- [등기국장님] 공탁금기금운용위원회 규칙 제정
- [TF] 대법원장님 보고 관련, 박○○ 부장님 지시사항 ⇨ 대법원장님 보고 일정 잡기
- [부당소송] 장○○ 판사님
- [부당소송] 윤○○ 부장님
- [부당소송] 서울북부지법 박○○ 판사님
- [실장님]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건수 없으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총무과에 알리는 방안
- 매년 공문 시행
- [차장님] 행정심판법 규칙 정비
- [처장님] 7/1 법관연수일정 보고
- [실장님] 정책연구용역 날짜 잡기
- [실장님] 문○○ 판사님 부탁 사항 (위원회 수당)
- 50만 원 정도로 하라고 지시
- [처장님] 심리상담프로그램 관련 이○○ 국장 이메일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권○○ 심의관님과 상의
- [처장님] 사법정책연구원 - 전문직 연구위원 사임 시 수시 선발할 것인지, 정규 선발할 것인지 여부
- [실장님] 사법정책연구원 - 전문직 연구위원 사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실장님] 부당소송, 1인 시위 활성화 방안, 매뉴얼 업데이트, 홍보 ⇨ 예산 사용 관련 점검 필요

- [실장님] 법정언행 모범 동영상 배포 및 온라인 게재
- [실장님] 법정언행 법관연수 유지 여부 사전 점검 필요
- [실장님] 정책연구용역 예산 사용 관련 상황 점검
- [실장님]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실장님] 김○○ 부장님 요청사항 - 의무이행소송 관련 스토리화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교수님 정책연구용역 커뮤니티 가입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열람 방법
- [법제처] 정책연구용역
-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직 연구위원 사직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안, 사직 후 임용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 [실장님] 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 방안 ⇨ 연수법관 부과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
- [처장님] (6월 분기실국장 회의 지시사항) 법학전문대학원 대책 마련
- [실장님] 법관연수 개편방안 관련 ⇨ 새로운 법관연수의 시대가 열렸는데, 예산상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 2) 법관연수 운영기구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관연수 기획교수실이 현재의 방안대로 하면 심정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음
 - 연수원장님이 새로 부임함에 따라서 지금 안에 대하여 반발하거나, 조직 운영상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음
 - 참고 사례: 기획법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무과가 각급 법원의 행사를 수수방관하는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있음 ->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서 면밀한 조직 설계 필요
 - 운영협의회는 정책심의기능을 담당하는 협의기구로서 다음 연도 연수계획 심의
 - 연수원 기획교수실과 법관연수 지원팀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유기적인 협조관계 구축,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 원칙적으로 법관연수의 기획과 집행은 연수원 기획교수실에서 담당해야 함
 - 법관연수 기본계획의 수립도 법관연수 기획교수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
 - 법관연수 지원팀은 자문역할만 하고, 의사결정권한은 없도록 해서, 새로운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 연수프로그램의 변화를 모색, 전년도 연수시행결과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연수프로그램 수립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
 - 운영협의회와 기획교수실, 지원팀은 약화된 3원화 조직
 - 지원팀은 독립된 구성이라기보다는 서포트 기구임
 - 구체적인 운영의 예
 - 2016년도 법관운영계획 수립

- 연수원장님 결재 전에 법관연수운영협의회를 열어야 함 ⇨ 10월 이전에 법관연수계획의 초안을 만들어서 안건으로 올려야 함
- 3/4분기까지의 연수결과만 분석하여 피드백을 받아서 해야 함
- 11월에 법관연수운영협의회 개최 - 연수원장님 결재가 나면 - 형식적인 결재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 복지총괄조직신설 TFT - 기획(연수원), 심의(운영협의회), 집행(지원, 아이디어, 조연)
- 완화된 3원화 조직
- 기획, 집행은 분리되어서는 안 됨 - 연수원

○ [실장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관련 피해 사례 ⇨ 대형 로펌 확인

- 이○○, 김○○○, 박○○에게 부탁

○ 사법발전재단 : 함○○ 부장판사님

○ [차장님] 다른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실제 운영 상황 정리

-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 실제 참석하는지 여부)

○ [실장님] 행정심판위원회 간소화 방안

○ [처장님] 서○○ 같은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처장님] 재항고사건, 행정심판사건, 진정/민원사건
- [실장님] 민원서류 접수 가능한지 여부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연구관실과 상의 ⇨ 소권 남용 논리 등
- 예)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한 대법원 2014두36358 판결 등
- 해외연수법관 수시과제 부과
- 정책연구용역 발주
- 사법정책연구용역

○ [실장님 말씀] Assessment 활용방안 적극 검토

- 법원장 보임에 활용 가능함

○ [실장님 말씀] 전국 재판부로부터 문제 있는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

○ 연임법관연수 준비

- 김○○ 형님이 부탁하신 국내연수 관련 예산 증액 요청(조○○ 사무관님)
- 기획총괄부장님 명의로 연수보고서 제출 독촉 메일 발송

○ [총괄부장님] 사법연수원 오찬/만찬 일정 확정

○ 법관연수 TFT 이○○ 판사님과 상의 ⇨ 점심

○ 공공데이터 관련 캠프 현황 파악 보고

○ [실장님 말씀] 석사 과정 후기 선발 여부도 검토

○ 석사과정 위탁 교육 개선 방안 마련

- 법관 : 일반직 비율을 50:50

- 법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석사과정 적극 발굴
- 법관들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와 같이 근무평정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
- 지원자가 적거나, 일반직 위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예산 불용 처리 ⇨ 예산 항목이 수 용비인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사법정책연구원 관련 김○○ 판사님이 보내신 이메일 관련

- 과제심의위원회
- 수시부과과제 (장○○ 판사님)
- 검토 완료 후 기본적인 정책 방향 확립

○ 사법연수원

- 오만찬 일정 확인
- 법원행정처장님 특강 및 오찬에 따라갈 심의관의 범위 확정. 그 기준 확립

○ 부당소송 관련 ⇨ 법원장 간담회 내용 검토 ⇨ 즉시 시행할 내용 시행착수

○ 이○○ 총괄심의관님과 상의 : [부당소송] 대구지법 기획 이○○ 판사 질문에 대한 답변

- 부당소송으로 인하여 소규모 지원에서 합의부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대책

○ 최○○ 판사 질문에 대한 답변

-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이○○ 계장에게 확인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불필요한 회의 불참석 가능 여부) 검토

○ 지금까지의 모든 이메일 확인 ⇨ 캘린더 및 업무계획표에 반영

○ 시○○ 판사님 작년도 발송 이메일 전달받기

2015. 6. 30. 업무계획표

- [사법연감] 형사 통계 개선 방안
- 전○○ 판사님께 이메일 드리기
- [차장님] 법정언행컨설팅 개선방안 검토할 것
 - 구체적으로는, 강○○ 연수의 개선방안
 - 차장님도 인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강○○ 연수를 수강한 사실이 있음
- 부당소송 관련 장○○ 판사님께 연락
- [부당소송] 윤○○ 부장님
- [부당소송] 서울북부지법 박○○ 판사님
- 연수원의 공통 인식 확립 ⇨ 7월초부터 차질 없도록 추진
- 백○○ 부장님 환송장소 예약, 기념품 준비
- 신입법관연수 ⇨ 실무적으로 실천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
-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 폐지 여부 ⇨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협의
- 법관연수TF 조직구성 방안 사법연수원에 공문 시행 ⇨ 신○○ 교수님께 확인
- 처장님 만찬 안내자료 보고
- [등기국장님] 공탁지원금 관련 대응 방안
- [등기국장님] 공탁금기금운용위원회 규칙 제정
- [실장님]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건수 없으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총무과에 알리는 방안
 - 매년 공문 시행
- [차장님] 행정심판규칙 정비
- [처장님] 7/1 법관연수일정 보고
- [실장님] 정책연구용역 날짜 잡기
- [실장님] 문○○ 판사님 부탁 사항 (위원회 수당)
 - 50만 원 정도로 하라고 지시
- [처장님] 심리상담프로그램 관련 이○○ 국장 이메일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권○○ 심의관님과 상의
- [처장님] 사법정책연구원 - 전문직 연구위원 사임 시 수시 선발할 것인지, 정규 선발할 것인지 여부
- [실장님] 사법정책연구원 - 전문직 연구위원 사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실장님] 부당소송, 1인 시위 활성화 방안, 매뉴얼 업데이트, 홍보 ⇨ 예산 사용 관련 점검

필요

- [실장님] 법정연행 모범 동영상 배포 및 온라인 게재
- [실장님] 법정연행 법관연수 유지 여부 사전 점검 필요
- [실장님] 정책연구용역 예산 사용 관련 상황 점검
- [실장님]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실장님] 김○○ 부장님 요청사항 - 의무이행소송 관련 스토리화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교수님 정책연구용역 커뮤니티 가입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열람 방법
- [법제처] 정책연구용역
-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직 연구위원 사직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안, 사직 후 임용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 [실장님] 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 방안 ⇨ 연수법관 부과과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
- [처장님] (6월 분기실국장 회의 지시사항) 법학전문대학원 대책 마련
- [실장님] 법관연수 개편방안 관련 ⇨ 새로운 법관연수의 시대가 열렸는데, 예산상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실장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관련 피해 사례 ⇨ 대형 로펌 확인
 - 이○○, 김○○○, 박○○에게 부탁
- 사법발전재단 : 함○○ 부장판사님
- [차장님] 다른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실제 운영 상황 정리
 -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 실제 참석하는지 여부)
- [실장님] 행정심판위원회 간소화 방안
- [처장님] 서○○ 같은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처장님] 재항고사건, 행정심판사건, 진정/민원사건
 - [실장님] 민원서류 접수 가능한지 여부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연구관실과 상의 ⇨ 소권 남용 논리 등
 - 예)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한 대법원 2014두36358 판결 등
 - 해외연수법관 수시과제 부과
 - 정책연구용역 발주
 - 사법정책연구용역
- [실장님 말씀] Assessment 활용방안 적극 검토

- 법원장 보임에 활용 가능함
- [실장님 말씀] 전국 재판부로부터 문제 있는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
- 연임법관연수 준비
 - 김○○ 형님이 부탁하신 국내연수 관련 예산 증액 요청(조○○ 사무관님)
 - 기획총괄부장님 명의로 연수보고서 제출 독촉 메일 발송
- [총괄부장님] 사법연수원 오찬/만찬 일정 확정
- 법관연수 TFT 이○○ 판사님과 상의 ⇨ 점심
- 공공데이터 관련 캠프 현황 파악 보고
- [실장님 말씀] 석사 과정 후기 선발 여부도 검토
- 석사과정 위탁 교육 개선 방안 마련
 - 법관 : 일반직 비율을 50:50
 - 법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석사과정 적극 발굴
 - 법관들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와 같이 근무평정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
 - 지원자가 적거나, 일반직 위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예산 불용 처리 ⇨ 예산 항목이 수 용비인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사법정책연구원 관련 김○○ 판사님이 보내신 이메일 관련
 - 과제심의위원회
 - 수시부과과제 (장○○ 판사님)
 - 검토 완료 후 기본적인 정책 방향 확립
- 사법연수원
 - 오만찬 일정 확인
 - 법원행정처장님 특강 및 오찬에 따라갈 심의관의 범위 확정. 그 기준 확립
- 부당소송 관련 ⇨ 법원장 간담회 내용 검토 ⇨ 즉시 시행할 내용 시행착수
- 이○○ 총괄심의관님과 상의 : [부당소송] 대구지법 기획 이○○ 판사 질문에 대한 답변
 - 부당소송으로 인하여 소규모 지원에서 합의부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대책
- 최○○ 판사 질문에 대한 답변
 -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이○○ 계장에게 확인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불필요한 회의 불참 가능 여부) 검토
- 지금까지의 모든 이메일 확인 ⇨ 캘린더 및 업무계획표에 반영
- 시○○ 판사님 작년도 발송 이메일 전달받기

2015. 7. 8. 업무계획표

- [사법연감] 사법부 활동 내역
- [사법연감] 형사 통계 개선 방안
- 전○○ 부장님이 추천한 교수님
- [차장님] 법정언행컨설팅 개선방안 검토할 것
 - 구체적으로는, 강의형 연수의 개선방안
 - 차장님도 인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강의형 연수를 수강한 사실이 있음
- [부당소송] 윤○○ 부장님
- [부당소송] 서울북부지법 박○○ 판사님
- 연수원의 공통 인식 확립 ⇨ 7월초부터 차질 없도록 추진
- [실장님] 법정언행 모범 동영상 배포 및 온라인 게재
- [실장님] 법정언행 법관연수 유지 여부 사전 점검 필요
-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 폐지 여부 ⇨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협의
- [등기국장님] 공탁지원금 관련 대응 방안
- [등기국장님] 공탁금기금운용위원회 규칙 제정
- [차장님] 행정심판규칙 정비
- [실장님] 문○○ 판사님 부탁 사항 (위원회 수당)
 - 50만 원 정도로 하라고 지시
- [처장님] 심리상담프로그램 관련 이○○ 국장 이메일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권○○ 심의관님과 상의
- [처장님] 사법정책연구원 - 전문직 연구위원 사임 시 수시 선발할 것인지, 정규 선발할 것인지 여부
-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직 연구위원 사직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안, 사직 후 임용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 [실장님] 사법정책연구원 - 전문직 연구위원 사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실장님] 부당소송, 1인 시위 활성화 방안, 매뉴얼 업데이트, 홍보 ⇨ 예산 사용 관련 점검 필요
- [실장님]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건수 없으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총무과에 알리는 방안
 - 매년 공문 시행
- [실장님] 정책연구용역 예산 사용 관련 상황 점검

- [실장님]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교수님 정책연구용역 커뮤니티 가입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열람 방법
- [법제처] 정책연구용역 => 문○○ 판사님께 토스
- [실장님] 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 방안 ⇨ 연수법관 부과과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
- [처장님] 서○○ 같은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처장님] 재항고사건, 행정심판사건, 진정/민원사건
 - [실장님] 민원서류 접수 가능한지 여부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연구관실과 상의 ⇨ 소권 남용 논리 등
 - 예)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한 대법원 2014두36358 판결 등
 - 해외연수법관 수시과제 부과
 - 정책연구용역 발주
 - 사법정책연구용역
- [처장님] (6월 분기실국장 회의 지시사항) 법학전문대학원 대책 마련
- [실장님] 법관연수 개편방안 관련 ⇨ 새로운 법관연수의 시대가 열렸는데, 예산상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실장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관련 피해 사례 ⇨ 대형 로펌 확인
 - 이○○, 김○○○, 박○○에게 부탁
- [실장님] 김○○ 부장님 요청사항 - 의무이행소송 관련 스토리화
- 사법발전재단 : 함○○ 부장판사님
- [차장님] 다른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실제 운영 상황 정리
 -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 실제 참석하는지 여부)
- [실장님] 행정심판위원회 간소화 방안
- [실장님 말씀] Assessment 활용방안 적극 검토
 - 법원장 보임에 활용 가능함
- [실장님 말씀] 전국 재판부로부터 문제 있는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
- 연임법관연수 준비
 - 김○○ 형님이 부탁하신 국내연수 관련 예산 증액 요청(조○○ 사무관님)
 - 기획총괄부장님 명의로 연수보고서 제출 독촉 메일 발송
- [총괄부장님] 사법연수원 오찬/만찬 일정 확정
- 법관연수 TFT 이○○ 판사님과 상의 ⇨ 점심

- 공공데이터 관련 캠프 현황 파악 보고
- [실장님 말씀] 석사 과정 후기 선발 여부도 검토
- 석사과정 위탁 교육 개선 방안 마련
 - 법관 : 일반직 비율을 50:50
 - 법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석사과정 적극 발굴
 - 법관들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와 같이 근무평정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
 - 지원자가 적거나, 일반직 위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예산 불용 처리 ⇨ 예산 항목이 수 용비인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사법정책연구원 관련 김○○ 판사님이 보내신 이메일 관련
 - 과제심의위원회
 - 수시부과과제 (장○○ 판사님)
 - 검토 완료 후 기본적인 정책 방향 확립
- 사법연수원
 - 오만찬 일정 확인
 - 법원행정처장님 특강 및 오찬에 따라갈 심의관의 범위 확정. 그 기준 확립
- 부당소송 관련 ⇨ 법원장 간담회 내용 검토 ⇨ 즉시 시행할 내용 시행착수
- 이○○ 총괄심의관님과 상의 : [부당소송] 대구지법 기획 이○○ 판사 질문에 대한 답변
 - 부당소송으로 인하여 소규모 지원에서 합의부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대책
- 최○○ 판사 질문에 대한 답변
 -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이○○ 계장에게 확인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불필요한 회의 불참석 가능 여부) 검토
- 지금까지의 모든 이메일 확인 ⇨ 캘린더 및 업무계획표에 반영
- 시○○ 판사님 작년도 발송 이메일 전달받기

2015. 7. 22. 업무계획표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 김○○ 부장님 -> 발표비 50만 원 지급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기초실 및 다른 각 실국에 배포 (기한 → 8/7)
- [사법연감] 사법부 활동 내역
- [사법연감] 형사 통계 개선 방안
- 전○○ 부장님이 추천한 교수님께 연락
-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지원팀 구성, 법관연수운영협의회 준비
- [차장님] 법정언행컨설팅 개선방안 검토할 것
 - 구체적으로는, 강의형 연수의 개선방안
 - 차장님도 인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강의형 연수를 수강한 사실이 있음
- [부당소송] 윤○○ 부장님
- [부당소송] 서울북부지법 박○○ 판사님
- 연수원의 공통 인식 확립 ⇨ 7월초부터 차질 없도록 추진
- [실장님] 법정언행 모범 동영상 배포 및 온라인 게재
- [실장님] 법정언행 법관연수 유지 여부 사전 점검 필요
-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 폐지 여부 ⇨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협의
- [등기국장님] 공탁지원금 관련 대응 방안 → 사법발전재단 현황 면밀히 파악할 것
 - 7/21 다시 지시
- [등기국장님] 공탁금기금운용위원회 규칙 제정
- [차장님] 행정심판규칙 정비
- [실장님] 문○○ 판사님 부탁 사항 (위원회 수당)
 - 50만 원 정도로 하라고 지시
- [처장님] 심리상담프로그램 관련 이○○ 국장 이메일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권○○ 심의관님과 상의
- [처장님] 사법정책연구원 - 전문직 연구위원 사임 시 수시 선발할 것인지, 정규 선발할 것인지 여부
-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직 연구위원 사직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안, 사직 후 임용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 [실장님] 사법정책연구원 - 전문직 연구위원 사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실장님] 부당소송, 1인 시위 활성화 방안, 매뉴얼 업데이트, 홍보 ⇨ 예산 사용 관련 점검 필요
- [실장님]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건수 없으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총무과에 알리는 방안
 - 매년 공문 시행
- [실장님] 정책연구용역 예산 사용 관련 상황 점검
- [실장님]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교수님 정책연구용역 커뮤니티 가입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열람 방법
- [법제처] 정책연구용역 => 문○○ 판사님께 토스
- [실장님] 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 방안 ⇨ 연수법관 부과과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
- [처장님] 서○○ 같은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처장님] 재항고사건, 행정심판사건, 진정/민원사건
 - [실장님] 민원서류 접수 가능한지 여부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연구관실과 상의 ⇨ 소권 남용 논리 등
 - 예)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한 대법원 2014두36358 판결 등
 - 해외연수법관 수시과제 부과
 - 정책연구용역 발주
 - 사법정책연구용역
- [처장님] (6월 분기실국장 회의 지시사항) 법학전문대학원 대책 마련
- [실장님] 법관연수 개편방안 관련 ⇨ 새로운 법관연수의 시대가 열렸는데, 예산상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실장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관련 피해 사례 ⇨ 대형 로펌 확인
 - 이○○, 김○○○, 박○○에게 부탁
- [실장님] 김○○ 부장님 요청사항 - 의무이행소송 관련 스토리화
- 사법발전재단 : 함○○ 부장판사님
- [처장님] 다른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실제 운영 상황 정리
 -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 실제 참석하는지 여부)
- [실장님] 행정심판위원회 간소화 방안
- [실장님 말씀] Assessment 활용방안 적극 검토
 - 법원장 보임에 활용 가능함
- [실장님 말씀] 전국 재판부로부터 문제 있는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

- 연임법관연수 준비
 - 김○○ 형님이 부탁하신 국내연수 관련 예산 증액 요청(조○○ 사무관님)
 - 기획총괄부장님 명의로 연수보고서 제출 독촉 메일 발송
- [총괄부장님] 사법연수원 오찬/만찬 일정 확정
- 법관연수 TFT 이○○ 판사님과 상의 ⇨ 점심
- 공공데이터 관련 캠프 현황 파악 보고
- [실장님 말씀] 석사 과정 후기 선발 여부도 검토
- 석사과정 위탁 교육 개선 방안 마련
 - 법관 : 일반직 비율을 50:50
 - 법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석사과정 적극 발굴
 - 법관들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와 같이 근무평정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
 - 지원자가 적거나, 일반직 위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예산 불용 처리 ⇨ 예산 항목이 수 용비인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사법정책연구원 관련 김○○ 판사님이 보내신 이메일 관련
 - 과제심의위원회
 - 수사부과과제 (장○○ 판사님)
 - 검토 완료 후 기본적인 정책 방향 확립
- 사법연수원
 - 오만찬 일정 확인
 - 법원행정처장님 특강 및 오찬에 따라갈 심의관의 범위 확정. 그 기준 확립
- 부당소송 관련 ⇨ 법원장 간담회 내용 검토 ⇨ 즉시 시행할 내용 시행착수
- 이○○ 총괄심의관님과 상의 : [부당소송] 대구지법 기획 이○○ 판사 질문에 대한 답변
 - 부당소송으로 인하여 소규모 지원에서 합의부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대책
- 최○○ 판사 질문에 대한 답변
 -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이○○ 계장에게 확인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불필요한 회의 불참석 가능 여부) 검토
- 지금까지의 모든 이메일 확인 ⇨ 캘린더 및 업무계획표에 반영
- 시○○ 판사님 작년도 발송 이메일 전달받기

2015. 8. 17. 업무계획표

- 사법연감 결재
- 8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 8. 24.(월) 또는 8. 25.(화)
- 대법원 전합 판결문 인터넷 공개 관련 차장님, 기조실장님께 추가 보고, 수석부장님께 보고
- 법관연수지원팀, 법관연수 운영협의회 ⇨ 윤○○ 부장님께 보고
- =====
- 이○○ 판사님께 질문
 - 이행권고결정 권한을 사법보좌관에게 이양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16402)을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하도록 임내현 의원을 접촉, 설득한 구체적 과정
 - 전해철 의원이 2015. 7. 10.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16056): 당사자의 소송진술방식 개선
 - 의원입법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김○○ 부장님 -> 발표비 50만 원 지급
-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 기조실 및 다른 각 실국에 배포 (기한 → 8/7)
- [사법연감] 사법부 활동 내역
- [사법연감] 형사 통계 개선 방안
- 전○○ 부장님이 추천한 교수님께 연락
-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지원팀 구성, 법관연수운영협의회 준비
- [차장님] 법정언행컨설팅 개선방안 검토할 것
 - 구체적으로는, 강의형 연수의 개선방안
 - 차장님도 인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강의형 연수를 수강한 사실이 있음
- [부당소송] 윤○○ 부장님
- [부당소송] 서울북부지법 박○○ 판사님
- 연수원의 공통 인식 확립 ⇨ 7월초부터 차질 없도록 추진
- [실장님] 법정언행 모범 동영상 배포 및 온라인 게재
- [실장님] 법정언행 법관연수 유지 여부 사전 점검 필요
-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 폐지 여부 ⇨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협의
- [등기국장님] 공탁지원금 관련 대응 방안 → 사법발전재단 현황 면밀히 파악할 것
 - 7/21 다시 지시
- [등기국장님] 공탁금기금운용위원회 규칙 제정

- [차장님] 행정심판규칙 정비
- [실장님] 문○○ 판사님 부탁 사항 (위원회 수당)
 - 50만 원 정도로 하라고 지시
- [처장님] 심리상담프로그램 관련 이○○ 국장 이메일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권○○ 심의관님과 상의
- [처장님] 사법정책연구원 - 전문직 연구위원 사임 시 수시 선발할 것인지, 정규 선발할 것인지 여부
-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직 연구위원 사직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안, 사직 후 임용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 [실장님] 사법정책연구원 - 전문직 연구위원 사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실장님] 부당소송, 1인 시위 활성화 방안, 매뉴얼 업데이트, 홍보 ⇨ 예산 사용 관련 점검 필요
- [실장님]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건수 없으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총무과에 알리는 방안
 - 매년 공문 시행
- [실장님] 정책연구용역 예산 사용 관련 상황 점검
- [실장님] 퇴임 대법관 활동 관련 김동철 의원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교수님 정책연구용역 커뮤니티 가입
- [사법정책연구원]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열람 방법
- [법제처] 정책연구용역 => 문○○ 판사님께 토스
- [실장님] 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 방안 ⇨ 연수법관 부과과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
- [처장님] 서○○ 같은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처장님] 재항고사건, 행정심판사건, 진정/민원사건
 - [실장님] 민원서류 접수 가능한지 여부
 - [아이디어] 사법지원실 심○ 부장님, 이○○ 심의관님과 상의
 - 재판연구관실과 상의 ⇨ 소권 남용 논리 등
 - 예)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한 대법원 2014두36358 판결 등
 - 해외연수법관 수시과제 부과
 - 정책연구용역 발주
 - 사법정책연구용역
- [처장님] (6월 분기실국장 회의 지시사항) 법학전문대학원 대책 마련
- [실장님] 법관연수 개편방안 관련 ⇨ 새로운 법관연수의 시대가 열렸는데, 예산상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실장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관련 피해 사례 ⇨ 대형 로펌 확인
 - 이○○, 김○○○, 박○○에게 부탁
- [실장님] 김○○ 부장님 요청사항 - 의무이행소송 관련 스토리화
- 사법발전재단 : 함○○ 부장판사님
- [차장님] 다른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실제 운영 상황 정리
 -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 실제 참석하는지 여부)
- [실장님] 행정심판위원회 간소화 방안
- [실장님 말씀] Assessment 활용방안 적극 검토
 - 법원장 보임에 활용 가능함
- [실장님 말씀] 전국 재판부로부터 문제 있는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
- 연임법관연수 준비
 - 김○○ 형님이 부탁하신 국내연수 관련 예산 증액 요청(조○○ 사무관님)
 - 기획총괄부장님 명의로 연수보고서 제출 독촉 메일 발송
- [총괄부장님] 사법연수원 오찬/만찬 일정 확정
- 법관연수 TFT 이○○ 판사님과 상의 ⇨ 점심
- 공공데이터 관련 캠프 현황 파악 보고
- [실장님 말씀] 석사 과정 후기 선발 여부도 검토
- 석사과정 위탁 교육 개선 방안 마련
 - 법관 : 일반직 비율을 50:50
 - 법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석사과정 적극 발굴
 - 법관들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와 같이 근무평정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
 - 지원자가 적거나, 일반직 위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예산 불용 처리 ⇨ 예산 항목이 수 용비인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사법정책연구원 관련 김○○ 판사님이 보내신 이메일 관련
 - 과제심의위원회
 - 수시부과과제 (장○○ 판사님)
 - 검토 완료 후 기본적인 정책 방향 확립
- 사법연수원
 - 오만찬 일정 확인
 - 법원행정처장님 특강 및 오찬에 따라갈 심의관의 범위 확정. 그 기준 확립
- 부당소송 관련 ⇨ 법원장 간담회 내용 검토 ⇨ 즉시 시행할 내용 시행착수
- 이○○ 총괄심의관님과 상의 : [부당소송] 대구지법 기획 이○○ 판사 질문에 대한 답변
 - 부당소송으로 인하여 소규모 지원에서 합의부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대책

- 최○○ 판사 질문에 대한 답변
 -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이○○ 계장에게 확인
- 국회 법사위 출석 관련 처장님 말씀(불필요한 회의 불참석 가능 여부) 검토
- 지금까지의 모든 이메일 확인 ⇨ 캘린더 및 업무계획표에 반영
- 시○○ 판사님 작년도 발송 이메일 전달받기

4·13 총선 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8. 7. 31.

법원 행정처



4·13 총선 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2018. 7. 31.

법원행정처

I. 검토 배경

- ▣ 4·13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국가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 현 VIP의 임기 4년차 ⇨ 권력 누수 현상, 이른바 레임덕[lame duck] 현상이 예상됨
 -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전년도 ⇨ 정치적 역학 구도에 격변이 있을 가능성이 큼
- ▣ 사법부 주변 환경에도 역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현황 분석**과 **향후의 변화에 대한 전망** 필요
 - 정치적 역학 구도의 변화와 레임덕 현상 발생 여부 등 ⇨ 사법부의 독자적인 정책 추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변화된 정치 환경을 **사법부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
 - 사법부 外的인 변화가 중심 ⇨ 금번 분석에서는 사법부 내적 문제는 제외하고 ①정치권과 ②법조계에 중점을 둬

[2016년 전체 일정 개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법부 외부	4.13 총선		원 구성 司正 정국		여당 전당대회			본격 대선 국면 돌입		
사법부 내부	사법행정위 출범		상고법원 19대 국회 추진 종료		대법관 제청·임명					



II. 정치권

1. 현황과 전망

가. 개요

■ 키워드 ⇨ ① 급속한 레임덕 진행, ② 정치권 혼란·불안정

- ① 여당의 압도적 패배로 16년만의 여소야대 정국 도래 ⇨ 현 정부는 사실상 '식물정부'화할 것
 - 여당이 확보한 122석은 탄핵 역풍과 차떼기 사건 직후의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이 확보한 의석과 동일한 정도임
- ② 3당 모두 내부적 갈등의 씨앗을 내재 ⇨ 3당 체제 자체에서 오는 불안정 요소뿐만 아니라, 각 당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심화되어 정치권 전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국면을 겪게 될 가능성 있음
 - 각 정치 세력의 각개약진과 합종연횡 속에 사법부가 최대한의 실리를 쫓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시기임

나. 새누리당

■ ① 지난 보고 시 예상 시나리오와 현재 상황 ⇨ 정국 주도권 상실

여당 의석 수	의미 분석	계파 수장 입지	레임덕 여부
~149석	과반 의석 실패	박↓, 김↓	급속히 진행
150~169석	현상 유지 but 압승 실패	박⇨, 김⇨	서서히 진행
170~180석	압승 달성 (180석 이상이면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가능)	친박 비율이 낮아질수록 박↓, 김↑	오히려 급속히 진행
		친박 비율이 높아질수록 박↑, 김↓	진행되지 않음



- ‘여소야대’일뿐만 아니라 제1당의 지위 상실
 - 물론 무소속 당선인들 중 여권성향의 7인 복당 예상 ⇨ 제1당의 지위는 금세 회복할 것임
 - 패배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함 ⇨ ①전국 여론을 선도하는 수도권에서 대패하였고, ②향후 대선 승부의 바로미터인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사실상 패하였음
 -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정권 재창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함 ⇨ 정계개편의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음
 - 친박(진박), 비박의 새로운 구성 비율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정도로 참패 ⇨ 무조건적인 레임덕 개시·본격화
- ▣ ② 특히 당내 구심점 상실 ⇨ 정당 운영 자체가 표류하게 될 것
- 김무성 대표 치명상 ⇨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상실
- ☑ ‘武代’(김무성 대표)의 실패한 줄타기

 - ▶ 김 대표는 대선주자로서 朴心과 民心을 동시에 얻기 위하여 절묘한 줄타기를 시도 ⇨ 공천 과정에서 VIP와 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계파 여론을 의식한 면피성 처세·발언
 - ▶ 하지만 유승민 의원 공천 파동과 이른바 ‘옥새 소동’ 등으로 줄타기 전략 실패 ⇨ 긍정적 이미지를 상당히 상실하고 결국 선거 결과에도 결정적인 부정적 영향을 초래
- 선거에서 승리하였다면 이미지 하락을 만회할 수 있었겠으나, 참패하였고 특히 영남 텃밭에서 부진한 결과를 거둠 ⇨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상당 부분 상실
- ‘잠룡’들의 잇따른 낙선 ⇨ 代案도 당내에는不在한 상황
 - 오○○ 전 의원, 김○○ 전 지사, 안○○ 전 대법관 ⇨ 모두 지역구 낙선
- 黨外의 잠재적 대선 주자의 존재 ⇨ 오히려 당을 더욱 불안하게 함



-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 이 현실로 검토될 것, 유승민 의원 또한 비록 바람을 일으키는 데에는 실패하였으나 **생환**에 성공 ⇨ 새로운 갈등의 출발

다. 더불어 민주당

■ ① 대승을 거두었으나 그 과정에서 **두 가지 결정적 손실**을 입었고, 이는 향후 상당한 **당내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임** ⇨ ①호남에 대한 영향력 상실, ②**문재인 전 대표**의 이미지 하락

-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지만, 냉정하게 볼 때 일여다야 구도 속에서 거대 여당 탄생에 대한 견제 여론에 따라 反射利益을 본 것에 不過함 ⇨ 현 정부의 失政에 따른 반사이익 역시 상당함
- 오히려 호남을 통째로 국민의당에 내어준 결과가 당내에 상당한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앞서 본 바와 같은 이번 선거의 勝因을 고려하면 더민주가 전국정당화에 성공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임
- 특히 대선 득표율의 바로미터인 비례대표 득표율에서는 오히려 국민의당에 우위를 점하지도 못함
- 또한 ‘호남 지지도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는 문재인 대표의 광주 발언은,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아킬레스건이 되었음 ⇨ 일시적으로라도 문 대표는 자숙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할 것이고, 이는 곧 당의 구심점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큼

☑ 문 대표의 광주 발언의 二重的 效果

- ▶ 호남 민심을 돌리는 데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대선 가도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 ⇨ 표면적으로는 경솔한 말실수 내지 실패한 정치 도박
- ▶ 하지만 야권 성향 유권자의 위기감을 자극하여 **전국적 투표율 제고와 전략적 교차 투표에 상당한 역할**을 함 ⇨ 국민의당의 이른바 **녹색 바람의 수도권 입성을 차단**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압승을 거두도록 하는 결정적 성과를 거둠**

■ ② 한편 **大勝을 거둠에 따라 역설적으로 부담하게 된 불안 요소도 상당함** ⇨ ①‘**김종인 역할론**’, ②향후 **안이한 정세 판단**으로 인한



실책 가능성, ③제1당으로서의 정국 책임·역풍 가능성

- 선거에서 큰 공을 세운 김종인 대표측과 당내 주류 세력 사이에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될 것 ⇨ 특히 승리에 대한 자만과 안이한 정세 판단이 더해지면, 총선 직전 새누리당의 內紛과 유사한 밥그릇 싸움 등 당내 갈등이 노골화할 가능성이 큼
- 김종인 대표 비례대표 순번 문제를 통하여 한 차례 갈등이 드러나고 봉합된 전력이 있음 ⇨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문재인 대표의 일시적 리더십 상실 상태로 인하여, 이전과 달리 쉽게 봉합되기도 어려울 것
- 한편, ①19대 국회에서는 失政의 책임이 '무능한 여당'과 '발목 잡는 야당'에게 고루 분산되었다면, ②20대 국회에서는 '이빨 빠진 새누리'보다 '巨大野黨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더민주'에게 비판이 집중될 가능성이 큼 ⇨ 大勝으로 인한 逆風의 가능성

라. 국민의당

■ ① 일단 **대성공** ⇨ 이번 총선의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대표**

- 안 대표로서는 사실상 전국 단위 선거의 데뷔 무대였음 ⇨ 이른바 '安風'이 여론조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신기루가 아니라, 투표용지 한 장 한장에 실재하는 것임을 최초로 증명함
- 특히 더민주와 맞먹는 정도의 비례대표 득표력 발휘 ⇨ 실제 대선에서는 오히려 문 대표보다 강한 파괴력과 표의 확장성을 가질 것을 暗示하여 향후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협상에 유리한 카드 확보
- 자신만의 교섭단체를 가지게 됨 ⇨ 의회 권력에서도 실체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고, 대선 유권자들에게 더 이상 '무소속 대통령'의 불안한 이미지를 주지 않을 수 있게 됨
- 무엇보다도 선거 과정에서 단단한 독심 있는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과 ⇨ 더민주의 야권 연대 압박을 곳곳이 이겨내는 과정에서 '**强철수**'로 어필하여, 향후 정계개편 정국과



대선 과정에서 동료 의원과 유권자를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 내지 정서적 자산을 확보하였음

■ ② 상당한 변수·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 ⇨ 진정한 시험대에 본격적으로 오른 셈이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도 상당함

● 무엇보다도 소속 의원들 사이에 정체성 불확실 ⇨ 안 대표는 상당히 실험적인 정치 개혁을 시도할 것이나, 구성원들은 대부분 구세대 인사들이고 각기 개성이 매우 강함

- 당분간은 높은 지지율로써 이를 아우를 수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 현안 앞에서는 분열하게 될 가능성이 多 ⇨ 총선 과정에서도 극한의 분열 양상을 드러낸 바가 있음

● '호남 자민련'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전국 정당이 아니라 순전히 '호남에 의한, 호남을 위한' 정당이고, 캐스팅 보트만을 가질 뿐인 한계를 가짐

● 총선과 달리 대선에서는 '3당 체제론'이 통하지 아니함, 즉, 대선에서 3등 주자는 곧 '1순위 퇴출 대상'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임 ⇨ 대선 전까지 제3당 이미지를 극복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결국 좌절하게 될 것

마. BH·내각

■ ① 본격적 레임덕 불가피 ⇨ '식물정부'화 시작

☑ '레임덕 없는 대통령'論도 VIP 측근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VIP의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레임덕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시중에 돌고 있었음

- [근거] ⇨ ①총선 낙승 예상, ②콘크리트 지지율 30%, ③친인척 비리 발생 가능성 희박 등

▶ 하지만 이번 총선을 통하여 위 ①, ② 전제가 상실되고 말았음

■ ② 특히 정무 라인에 대한 문책론 제기되고 있음

● BH는 대외적으로는 '140석 확보도 쉽지 않다'라는 입장을 유지하였



으나, 대내적으로는 총선 직전까지도 '과반 의석 확보가 무난하다'라는 보고가 VIP에게 올라갔다고 함 ⇨ 정확한 총선결과 예상조차 하지 못한 데에 대한 비서실장과 정무 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함

- 일각에서는 개각을 통한 인적 쇄신론까지 나오고 있으나, 총리와 각료 인선에 매우 어려움을 겪어온 현 정부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각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3] **향후 BH 최대 관심사** ⇨ **레임덕 최소화, 나아가 퇴임 후 대비**

- 중요 정치 일정이 모두 '레임덕 최소화'라는 화두에 따라 검토·진행될 것 ⇨ 총선 후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 예상
- 구체적 내용은 아래 '법무부·검찰' 항목에서 상세 보고

2. 대응 방향

가. 정권의 레임덕 현상과 정치권의 혼돈 상황 최대한 활용

■ **친정 체제가 확고한 현재의 BH·내각에 균열·無力化** 예상

- 향후 사법부의 독자적 정책 추진이 가능한 여건 조성에 매우 긍정적인 변수가 발생한 것

■ **또한 3당이 서로 대립·갈등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당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상당할 것**

- 각 정치 계파들이 대선 가도에서 각개약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
⇨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와 20대 국회 초기에는 각종 정치 현안과 입법적 이슈에서 돌발적 변수가 있을 것

■ **사법부로서도 정책 사안에 따라서 각 정치 세력과 적극적으로 교섭·제휴한다면 의외의 긍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나. 특히 제3세력과 점점 확보



- 국민의당, 유승민 의원 등 제3세력이 상당한 勢를 점하게 되었음
 - 특히 향후 정계개편 정국에서 태풍의 눈으로 浮上할 수 있고 그렇다면 더욱 큰 세력으로 발전하게 될 수 있음
- 제3세력은 아직 정책의 상당 부분이 백지 상태임 ⇨ 조기에 사법부 우호 세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새누리, 더민주와 달리 對사법부 정책에서 새로운, 전향적 입장을 취하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
 - 한편, 박지원, 천정배, 유승민 의원 등 핵심 인사들이 사법부 우호적 성향이거나 사법부 인사들과 인적 관계가 있기도 함 ⇨ 적극적으로 접촉·활용하여야 할 지점임

다. 법조인 의원 적극 관리

■ 법조인 당선 현황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무소속	계
법관	나경원(서울동작을) 홍일표(인천남갑) 여상규(사천·남해·하동) 이주영(창원마산합포)	추미애(서울광진갑) 진영(서울용산) 박범계(대전서을)	송기석(광주서갑) 조배숙(익산을, 검사도 역임) 손금주(나주·화순)	주호영(대구수성을)	11
검사	김도읍(부산북·강서을) 곽상도(대구중·남) 권성동(강릉) 김진태(춘천)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최교일(영주·문경·예천) 김재경(진주을)	금태섭(서울강서갑) 조용천(남양주갑) 백혜련(수원을) 송기헌(원주을)	박주선(광주동·남을) 이용주(여수갑)		13
변호사	김동성(서울중·성동갑) 김정훈(부산남갑) 유기준(부산서·동)	전현희(서울강남을) 진선미(서울강동갑) 박주민(서울은평갑) 김해영(부산연제) 송영길(인천계양을) 이상민(대전유성을) 이언주(광명을) 전해철(안산상록갑) 이종걸(안양만안) 정성호(양주)	권은희(광주광산을) 김경진(광주북갑) 천정배(광주서을) 김관영(군산) 김삼화(비례) 박주현(비례)		24



		양승조(천안병) 안호영(원주진안무주장수) 이춘석(익산갑) 민홍철(김해갑) 이재정(비례)			
학계	정종섭(대구동갑)				1
계	15	22	11	1	49

▣ 전체적으로 법조인 당선인의 수가 늘어난 가운데 **법관 출신과 검사 출신의 불균형이 다소 시정됨**

- 19대 ⇨ 법조인 45인 중 법관 9인, 검사 15인
- 20대 ⇨ 법조인 49인 중 법관 11인, 검사 13인

▣ **총선 후 원 구성과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법관 출신 당선인을 중심으로 긍정적 변화 가능성 있음**

- 법관 출신 주호영(복당 전제), 홍일표, 나경원 의원 ⇨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 높다고 함
- 특히 법사위에 사법부에 우호적인 의원들이 포진할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판사 출신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 시 가시화될 가능성 있음 ⇨ 원 구성 과정에서 법사위 구성 내용을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여당 원내대표단과 최소한 법원에 적대적인 의원이 배제되도록 물밑 접촉 노력

▣ **법관 출신 당선인을 중심으로 법조인 당선인과 이른 시기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법조인 당선자들과 인맥지도 작성
- 당선 축하 모임 개최 등 검토



Ⅲ. 법조계

1. 법무부 · 검찰

가. 현황

▣ ① 검찰 라인의 행정부 장악

● 황교안 총리 체제 안정화

- 관료 위주의 내각 인선과 함께 정권 후반기의 ‘관리 모드’ 주도

● ‘우병우의 청와대’

- VIP의 각종 정책 기조에 법무부 · 검찰 입장 적극 반영

▣ ② 사정 라인 재편

● VIP는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패척결’을 화두로 제시

- [對 과거] 검찰 ⇨ ‘부정부패특별수사단’ 발족

- [對 미래] 총리 ⇨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

● 특히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중심 역할을 할 것

- ‘수사력 강화’ 를 당면 과제로 선언한 김수남 총장 체제의 선봉대

- 대선 공약으로 폐지된 대검 중수부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음

- 단장 ⇨ 김○○ 대전고검 차장(연수원 21기)

▣ ‘우병우 사단’의 수사 라인과 첩보 라인에 대한 동시·완전 장악

▶ [수사 라인①] 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 우 수석이 아끼는 후배

▶ [수사 라인②] 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특수부 진두지휘) ⇨ 우 수석과 각별

▶ [첩보 라인①] 이○○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

▶ [첩보 라인②] 최○○ 국가정보원 2차장 ⇨ 우 수석의 서울법대 동기



나. 전망

■ ① 이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총선 직후부터 사정 정국 조성 예상**

- 총선 결과가 여권에 불리하게 나타날수록 그 강도는 거세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 매우 강한 강도로 시도 예상

☑ **과거 정권 후반기 사정 태풍**

- ▶ MB정부 ⇨ **공정사회 확립** ▶ 참여정부 ⇨ **대북 특검**
- ▶ DJ정부 ⇨ **IMF 청문회** ▶ YS정부 ⇨ **역사 바로 세우기**

- 총선 이후부터 대선 정국까지 지속될 가능성 높음

- 우병우 민정수석이 주도할 것으로 보임

- ‘황교안 총리가 컨트롤타워,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양 날개, 우병우 수석이 뒷받침하는 형국’

■ ② 하지만 **레임덕의 정도가 한계 수준 이상** ⇨ 무리한 사정 시도가 **찾잔 속의 태풍으로 귀결되고 말 가능성이 큼**

- 레임덕의 정도에 비례한, 강한 사정 드라이브에 대한 욕구는 정권 최상층부에 매우 강할 것으로는 보임

- 그러나 레임덕의 영향은 검찰·법무부에도 정치적 풍향에 민감한 조직의 속성상 미칠 것임 ⇨ 무리한 사정이 제대로 집행되기 어려울 정도임

- 또한 여론·언론 환경도 급속히 냉각·비우호적으로 전환될 것임 ⇨ 사정이 지지나 탄력을 받지 못하여 지탱되기 어려움

■ ③ **무리한 수사·기소로 인하여 부담스러운 사건 처리에 대한 법원 부담이 일시적으로는 가중될 것**

- 성과를 내기 위한 검찰의 수사·기소는 무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여부, 본안에서의 유·무죄



판단 등에서 법원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임

다. 대응 방향

■ ① **주요 사건 처리 시 적절한 거리와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

- 특히 불필요하게 언론이나 여론의 오해를 살 필요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함
- 사건 처리 시 진의가 충분히 설명·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야 함

■ ② **사정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지 않도록 내부 구성원에 대한 자체적 단속 강화**

- 강도 높은 사정 국면에서 자칫 사법부 구성원의 비리 문제가 불거지질 가능성이 있음 ⇨ 발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위기 점검·관리 태세를 강화하여야 함
- 사정 정국 강화 시 전체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에 관하여 안내·공지하여야 함



2. 현재 · 변호사단체

가. 현황

- 현재와 대한변협 모두 총선 전후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관련하여 **민감한 이슈**가 있었음

- **대한변협** ⇨ **‘테러방지법’ 검토 의견 새누리당 송부 논란**

☑ **‘변협, 여당에 테러방지법 의견서 전달...변호사들 반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특정 정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들은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변협이 테러방지법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특정정당에 제출한 절차와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지난 24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59·부산 남구갑)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및 동법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변협은 검토의견서에서 “9·11테러 이후 OECD 국가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는데도 우리나라는 국가 대테러활동 수행에 기본이 되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안보와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 **현재** ⇨ **국회선진화법 사건 처리 지연 논란**

- 특히 **현재**는 그동안 상당히 **노골적인 親검찰·親BH적인 행보**를 취해왔음

-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 **정권으로부터 ‘체제·정권 유지의 협조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이미지 획득

- 다소 무리한 듯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였으나, 보수적인 여론의 압박을 활용하여 압도적인 차이의 정당해산 결정 ⇨ 결국 **법무부와 현재 모두에 대한 BH의 전폭적 지지·신뢰**로 이어졌음
- BH로부터 각종 유무형의 이익을 받음

나. 전망



▣ 정치 지형의 변화로 인하여 현재와 변호사단체도 **무분별한 정치적 행보에 부담을 느끼고 이를 자제할 것으로 보임**

- 현재의 경우 국회선진화법, 김영란법 등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 관하여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사건 처리를 유보할 가능성 있음
- 특히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18대 국회에서 19대 국회의 여소야대 구성을 우려하여 적극 추진한 입법인데, 그러한 우려가 20대 국회에서 현실화되었음

☑ 다만, 최근 현재소장이 국회선진화법과 김영란법에 관하여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바 있기는 함

▶ “박○○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 심사를 19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또 지난 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김영란법’에 대한 결론은 시행 예정일인 9월 전에 내리겠다고 전했다. 박 현재소장은 3. 18.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2016. 3. 18.자 파이낸셜 뉴스 기사)

다. 대응 방향

▣ 현재·변호사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이미지 획득을 위하여 **이들의 정치적 행보에 관한 비판적 여론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 있음**

- 언론기관의 칼럼 등을 통한 문제 지적, 우려 표시 등

▣ 특히 **현재에 대하여는 향후 개헌 정국 도래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 있음**

- 19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 헌법학 교수 대거 참여하여 사법부에 불리한 환경 조성된 경험 있음
- 총선 이후 도래할 개헌 정국에서도 유사한 과정을 밟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헌법학계에 폭넓은 우군 확보 노력
 - ‘개헌자문위원회’ 類의 자문기관 구성 시 초기 구성 단계부터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 등

[끝]

뉴욕타임즈와 같이 언론이 중립적,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

한국 사회에서 진영 논리로 갈라진 현실.

시사인은 기본적으로 現 대법원은 보수화되어 있다고 보고, 대법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입장.
중립적 국가기관으로 보지않고, 보수적 정권과 등치시키고 있음

이하 내용은 차○○ 판사의 시사인 기고와 관련하여 4명의 전
현직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모여 토론한 내용(2페이지 정도 분
량)으로 차○○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차○○ 판사의 개
인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법령 저촉을 고려하여 공개
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상고법원에 대한 사법부 내부 소통 및 홍보 방안

2015. 7. 17.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최근 상고법원에 관한 ①내부소통 노력 및 ②주요 언론의 일련의 우호적 보도로 법원 내부에서 상고법원 법률안 통과에 대한 기대심리 확산·상승기류
 - 연초 상당수 일선법관들의 무관심 내지 비관적 전망을 적극적 관심과 낙관적 분위기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둠
- 그러나 ①현재 입법환경상 법률안 9월 정기회 이전에는 통과 가능성 희박하고, ②7월 들어 일부 언론이 상고법원 도입 시도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기도 함 ⇨ 모처럼 조성된 법원 내부의 기대감이 **실망감이나 부정적 분위기로 악화될 우려** 차단필요
 - 법원 내부의 일부 부정적 분위기가 대외적으로도 입법 추진동력을 약화시켰던 연초의 상황으로 회귀하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함

☑ 연초 어느 법사위원의 뼈아픈 발언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모 부장판사가 말하기를, 모든 판사들이 상고법원 설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판사들은 아예 그런 정책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

- 내부소통 현황 등 재점검을 통한 소통 지속강화 필요
 - 그간의 내부소통 방안 및 성과 등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반기 입법추진 기간 내내 법원 내부의 결속과 지지를 강화·지속할 방안 검토
 - 對국회·언론 전략과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반기 홍보 그랜드 플랜의 일환으로 전략 수립할 필요



2. 내부 인식 현황 및 기존 소통 방안 점검

가. 점검 필요성 및 방법론

▣ 내부 인식 현황 점검 및 성과 분석 ⇨ 하반기 내부소통 방안의 방향 설정

- 냉정한 인식 현황 점검을 바탕으로 법원 내부의 이해 고취 및 결속력 강화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가시적 방안 모색 필요
- 피상적 내부 소통 및 홍보 이상의, 상고법원에 대한 심층 소개, 법관 개개인의 관심 사항에 대한 직접적·구체적 설명, 반대 입장에 대한 설득 논리 등 구축하여 전파하는 방안 필요

▣ 구체적 점검 방법 및 성과 분석 방향

- ①다층화, 다각화된 의견 수렴 방안을 통해 법원 구성원의 상고법원 관련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②그간 시행되어 온 코트넷 상고법원 배너 게시, 각급 법원 법관 워크숍 등 기존 내부 소통방안에 대하여 성과 분석
- 인식 현황 파악 방법 ⇨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을 중점 대상으로 함
 - ▣ ①법관 전용 익명 인터넷 게시판 ⇨ 진솔한 목소리 등 정확한 여론 수렴
 - ▣ ②기획법관 등을 통한 현황 및 법관 여론 취합 ⇨ 폭넓은 현황 및 기수·경력 등 고려한 분석가능한 현황 파악 + 질의 사항 등 취합
 - ▣ ③행정처 심의관 등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수집 ⇨ 문제의식에 기반한 현황 파악
- 성과 분석 방법
 - ▣ 기존 소통 방안에 대한 법관들의 평가 ⇨ ①몰입도를 높이는 긍정적 요소 및 ②반발감을 초래하는 부정적 요소 추출



- 내부 소통의 [1단계 목표]인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제공** 여부 및 [2단계 목표]인 **공감대 형성과 심정적 결속 강화** 목표성취 여부 및 기여도 분석

나. 내부 인식 현황 점검

■ 전반적 인식 현황 개관

- 상반기에 비하여 관심도와 정보 수준 향상
 - ① 주요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 + ② 법원장, 수석부장 등이 티타임, 만찬, 판사회의, 법관 워크샵 등 다양한 자리에서 상고법원 정보 제공
 - ⇨ 관심도의 발현으로 코트넷 상고법원 게시판 중 주요 **언론보도 정리 게시물**의 **조회수가 1,849회**, 주요 **방송보도** 정리 게시물 **1,359회**, 상고법원 관련 **법안심사 일정 안내** 게시물이 **1,543회**, **공청회 자료집** 게시물이 **820회**에 달함(중복 제외한 순 조회인원수임. 조회수에 일반직이 포함되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수치임)
 - 다만 여전히 **일부 기획법관 조차 ‘솔직히 판사들이 별 관심 없고, 통과 가능성에는 더욱 회의적이다’** 라고 하고 있음 ⇨ 관심도와 지지도가 다수의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님
- 법관들의 관심은 대부분 인사제도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표명되고 있음 ⇨ 심급제도, 사실심 충실화와의 관계, 사법부 위상 강화 등의 관점에 대하여는 언급 많지 않음
- 상고법원 도입의 **불가피성**에 대하여는 공감대 확산
 - 무관심하던 판사들의 경우 불가피한 제도라는 점에는 동의하게 됨 ⇨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법관도 생김
 - 처음부터 반대의견을 가졌던 판사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설득되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입장이나, 다만 반대 목소리를 표출하지는 않는 분위기 형성
- 직급별·계층별 관심도 편차 여전히 큼
 - 부장판사 이상 및 대법원 또는 상고법원 연구관 선발 대상 기수 판사들의 상당한 관심도 vs 그 이하, 특히 배석판사들의 낮은 관심도



● 주로 제기되는 반대 의견

- ▶ 판사들 의견수렴 절차 없이 행정처에서 다 정해놓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 하였다
- ▶ 상고사건이 많고, 상고심 심리부담이 큰 것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사실인정에 개입하였기 때문인데**, 상고법원 설치되면 상고심 강화한다면서 우수한 자원을 상고법원 판사 또는 재판연구관으로 대거 데려갈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하급심에 대한 불신으로 상고심의 파기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법관 익명 게시판에서 크게 호응을 얻음**)
- ▶ 높은 분들에게만 좋고, 평판사들에게는 좋은 점 없어 보인다
- ▶ (특히 단독판사를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승진 대상 보직을 만들면 법관 관료화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

■ 구체적 인식

- ▶ 기대감을 갖는 판사들 ⇨ 상반기 **6월 국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언론, 기획법관 등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 ▶ 주요 언론에서 갑자기 상고법원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보도하는데, **대법원에서 언론과 무슨 딜을 한 것이냐**
- ▶ 상고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사유로 정한 '헌법위반, 판례위반' 등은 주장하기 나름이어서 **결국 어정쩡한 4심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 ▶ 판사회에서 법원장에게 '사실심 충실화와 상고법원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묻기도 함
- ▶ 상고법원에서 심사할 사건과 대법원에서 심사할 사건의 **구분이 여전히 모호하고 애매하다**
- ▶ 필요성은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통과가 되겠느냐**
- ▶ 직관적으로 수궁이 되는 **대법관 증원론과 상고허가제에 비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 ▶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법원이 상고법원에 올인한다고 계속 쓰는 것이 부담스럽고, 놀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 ▶ 사법행정라인을 중심으로 **상고법원 이야기만 하는 것에 솔직히 반감이 든다**
- ▶ 헌법재판소에 밀리지 않고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단순히 업무량 때문만이라면 이와 같이 올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차라리 법관들에게 현재 등과의 관계에서 **사법부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니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이 공감대를 얻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판사들이 법원 조직 자체에 대한 애정은 있다
- ▶ 대법원장 인사권이 집중되는 것에 비판적인 법관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렇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낼 수 있는 것 아니냐



- ▶ 법률안 발의 당시 각 법원장 및 행정처 간부들이 의원들에게 사실상 입법청탁을 한 것으로 보여 불쾌했는데, 지금은 다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 ▶ 대법원의 인사권, 통제권 강화, 상고법원의 우수인력 독점 등 사법부 전체로 보아 상층부의 비대화가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문이다
- ▶ 당장 와 닿지 않는 상고심 개선보다는 변협 및 각 변회의 대립, 순회 재판 제도 도입 아이디어 등이 흥미롭다

■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 확정 可否 ⇨ 아직까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움.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내심으로 모두 찬성한다는 취지로 단정하기 어려움**

- 현 단계에서는 적극 반대 내지 무관심 법관이 크게 감소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어 보임
- 일선 법관들이 상고법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하여는 ①법관 개개인에게 줄 장점, ②(대법원장님 개인이 아닌) 사법부 위상 강화, ③국민에이 누리게 될 장점 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심정적 결속감을 공유함은 물론, 상고법원 **좌절시 사법부 위상추락으로 이어진다는 위기감**까지 공유되어야 할 것임

다. 기존 소통 방안 평가

■ **개관**

- 각급 법원원의 사법행정라인을 중심으로 한 정보제공형 소통이 중심을 이룸 ⇨ [1단계 목표 일부 달성] + [2단계 목표 미흡]
- ■ 티타임, 법관 워크숍, 각종 연구회 등 소통 기제는 다양하였으나, 소통 주체 및 방식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됨 ⇨ 새로운 내부 소통축으로서 허브(HUB) 법관 모색할 필요
- ■ 일부 관심도 및 이해도 제고에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선 법관 입장에서 일부 피로도 느껴지고, 가치 공유 및 심정적 결속 강화의 단계로는 나아



가지 못함 ⇨ 정서적 교감 강화 방안 모색할 필요

3. 하반기 내부 소통 강화 방안

가. 추진 목표

■ ① Boom-Up 상태 지속 유지

- 언론 및 외부의 상고법원 관심도가 낮아지거나 소강상태가 되더라도 법원 구성원의 관심과 긍정적 분위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

■ ② one voice를 넘어 적극적인 홍보대사 역할 부여

- 정보제공을 통한 이해도 제고 및 오해 불식을 바탕으로 ①상고법원이 사법부와 국민에게 줄 장점에 기초한 몰입감과 심정적 결속감은 물론 ② 상고법원 좌절시 사법부의 위상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위기감까지 공유하는 방안
- 사법부가 대외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입장을 현출함은 물론, 강화된 심정적 결속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 각자가 홍보대사 역할에 나서도록 할 필요
⇨ 행정처 독주에 대한 우려 불식은 물론 전방위적 홍보·설득 강화

■ ③ 법원 내부 상향식 추동력 확보 및 일반직 공무원까지 공감대 확산

- 법원행정처로부터 각급 법원으로 내려가는 탑다운(Top Down) 방식의 소통을 넘어 일선 법관들의 관심과 기대가 사법행정라인과 외부로 표출될 수 있는 바텀업(Bottom Up) 형태의 소통으로 진화할 필요
- 법관은 물론 법원공무원까지 상고법원의 대세론 확산에 동참하는 방안

■ ⇨ 입법 추동력 극대화

나. 구체적 소통 방안



1)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설득 방향 설정

■ 기본원칙

- ①법관의 계층별·직급별 관심사항과 의문점을 추출하여 그에 대응하는 최적의 맞춤형 정보제공
- ②인사정책 등 일선 법관들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중심으로 정보제공함으로써 관심 유발
- ③언론을 통하여 단편적으로 접한 왜곡된 정보와 피상적인 이해로 인하여 상고법원안에 대한 오해가 누적된 상황 ⇨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명확한 설명 필요
- ④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사법부 비전에 대한 가치 공유를 통해 일체감과 몰입감 부여 ⇨ 심정적 결속 강화로 법관 개개인의 상고법원 전도사 역할 기대 ⇨ 입법 추동력 극대화

■ 계층별·직급별 관심사항 추출

▶ [고법부장 이상의 법관 그룹]

- 상고법원 신설에 따른 상고법원 판사 임명 규모, 대상 범위 및 시기 등
- 상고법원과 대법원의 관계 및 고등법원 형해화 우려
- 상고법원 도입 성부가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

▶ [지법부장 그룹]

-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따른 고법부장 공석 규모 등 인사에 미치는 영향
- 상고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4심제 우려

▶ [단독판사 그룹]

- 상고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및 대상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축소 여부
- 상고법원 설치로 (특히 도입 초기) 상고심이 사실인정에 더욱 적극 개입할 것인지 여부 및 하급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여부
- 상고법원 추진 배경 및 법관 관료화 우려

▶ [배석판사 그룹]

- 상고법원과 일선 법원의 관련성



- 사실심 충실화와 상고법원의 관련성
- 상고법원에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

■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설명 전략①] 지법부장 이상 그룹 ⇨ **비전 공유**

- ①상고법원 신설에 따른 대법원의 정책법원化 ⇨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 위상 강화**
 - 국가의 법질서를 중국적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와 통합을 주도**하여 국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명실상부한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 구축**
 - 법치주의 구현, 사회통합, 규범담론 등에 관한 **논의의 질과 양의 모든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압도 가능
- ②상고법원의 충실한 권리구제기능 및 심리불속행 폐지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 국민의 만족도 제고로 사법부 전체 위상 강화**
 - 법무부 등과의 관계에서도 차별화된 위상 확고히 할 수 있음
- ③**심급체계 전반**에 관한 **리모델링 정책** ⇨ 사법부 장기 비전

[사실심으로서 1심] 쟁점의 조기 현출, 쟁점 중심의 충실 심리 및 실질적 증거조사
⇨ 원칙적으로 사실심리 종결
[사후심으로서 2심] 심리범위 적정화 ⇨ **장기적으로 항소법원 설립 추진**
[최종심으로서 3심]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 + 상고법원의 권리구제 기능

- ④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 높다는 **긍정적 메시지 전달**
 - 6월 임시회에서 입법 무산으로 19대 국회 처리가 어렵다는 우려 해소 필요

■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설명 전략②] 단독판사 이하 그룹 ⇨ **오해 해소를 통한 부정적 선입견 불식 및 구체적 이해관계 설명**

- ①**도입필요성과 배경**에 대한 근본적 오해 해소
 - 대법원 사건 부담 경감을 위한 **대증적 처방이 아니라 심급구조 전반을 개선하려는 장기적 비전**과 **최고법원으로서 정책법원 구현을 위한 청사건의**



일환임

- ❖ 수뇌부 몇 명의 의견이 아니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제도임

- ❖ **국민을 위한 상고심 개선 방안**이고, 사법부 상층부를 위한 방안이 아님

● [2]사실심 관여 및 관료화에 관한 우려 불식

- ❖ 항소심의 사후심化, 상고심의 법률심化를 지향하는 사법부 장기 비전에 비추어 사실심 관여 확대 가능성 없음

- ❖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의 실질적 추천권 행사 등으로 인사권 내려놓는 방안 추진하고 있어 법관 관료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함

● [3]바람직한 재판 구현 및 법관의 자부심 고취 방안임을 안내

- ❖ 사실심 충실화 방안 등은 재판의 중심을 사실심에 두려는 정책으로서 **사실심 법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메시지** 표명

- ❖ 대법원의 정책법원化에 따라 퇴임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도 해소될 것임

▣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설명 전략] 직급별 인사 관심사항 안내

- 내부 설명의 기회를 통해 상고법원 판사 수, 임명방식 및 예상임기, 연구관 운영 문제 등을 안내할 필요 있음

☑ 인사 관련 직급별 관심사항

▶[지법 배석판사] 장기적 관점에서 상고법원이 향후 법관으로서의 라이프 사이클에 미치게 될 영향 등

▶[단독판사] 상고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전보 발령 기준 등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법 배석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유지 여부, 현 직위에서 상고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 발령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

▶[지법 부장판사] 상고법원 도입과 고등부장 전보 발령의 상관관계, 인사적체 해소 기여 여부 등

▶[고법 부장판사 이상급] 상고법원 판사 임명 절차, 임명 기준 및 임기 만료 후 인사 패턴 등

- 출력물이나 파일 형태로는 배포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로 예상 인사경로 등 법관의 인사에 미치는 영향 설명 가능

2) 이해도 제고를 위한 Q&A 자료집



▣ 법원 내부용 심층 Q&A 자료집 준비

- 추출된 계층별·직급별 법관들의 관심 사항, 의문점 등 정밀 분석 ⇨ 타
깃별 분류화

- (예시 ①) 인사 발령, 보직 관점에서의 계층별·직급별 관심 사항 등

- ▶ [지법 배석판사] 장기적 관점에서 상고법원이 향후 법관으로서의 라이프 사이클에 미치게 될 영향 등
- ▶ [단독판사] 상고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전보 발령 기준, 사법부 관료화 우려 등
- ▶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법 배석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유지 여부, 현 직위에서 상고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 발령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
- ▶ [지법 부장판사] 상고법원 도입과 고등부장 전보 발령의 상관관계, 인사적체 해소 기여 여부 등
- ▶ [고법 부장판사 이상급] 상고법관 임명 절차, 임명 기준, 상고법관 임기 만료 후 인사 패턴 등

- (예시 ②) 상고법원 도입 취지, 제도 개요 등에 관한 의문 사항

- ▶ 인위적으로 승진 대상 보직이 늘어남에 따라 법관 관료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 ▶ 현재와의 관계에서 대법원의 최고법원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 아닌지?
- ▶ '헌법위반' 또는 '판례위반' 사유는 주장에 따라 얼마든지 성립 가능하므로, 결국 어정쩡한 4심제가 되는 것 아닌지?
- ▶ 사실심 충실화와 상고법원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와 닿지 않음
- ▶ 상고사건 적체하는 주된 이유는 대법원이 하급심의 사실인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 ▶ 대법관 증원, 상고허가제는 차치하더라도, 고법 상고부, 대법원 이원적 구성 등 상고법원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제도 개선책도 많이 있는데, 왜 상고법원 제도만을 사법부가 올인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밀어붙여야 하는가?

- 분류화된 영역별로 체계적 답변 자료 작성

▣ Q&A 자료의 효과적 활용

- 사법연수원 경력별 연수의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 강의를 통해 소개
- 각급 법원 법원장들에게 자료집 송부 ⇨ 소속 법관들과의 티타임, 오만찬 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내용 전달



- 각급 법원 워크숍, 법관 간담회, 직급별 판사회의 등을 통해 정보 제공
 - ❑ 다만,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자료를 배부하지 아니하고, 기획법관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정보 제공
-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코트넷 상고법원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안 검토

3) 비공식 순회 간담회

■ 법원장 순회 간담회

- [개요] 일선 법원의 여론을 주도하는 법원장과의 권역별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내부 소통 강화 계기 마련
- [목적]
 - ❑ 대내적으로, 소속 법관을 비롯한 법원 가족들의 상고법원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내부 결속 방안에 대한 쌍방향 의견수렴
 - ❑ 대외적으로, 지역 언론, 유관기관 또는 유력 인사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방안 등 논의
- [시행 형태 및 일정] 비공식적 회합 형태로 진행 + 권역별 분리시행
 - ❑ 수도권 7. 7. 시행 / 충청·호남권 7. 31. 및 영남권 8. 5. 예정

■ 각급 법원 비공식 순회 간담회

- 필요성
 - ❑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대면 간담회에서의 스킨십과 피드백을 통하여 공감대 형성과 심정적 결속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 전국적 간담회 개최를 통해 사법부가 one-voice를 낼 수 있는 여건 조성
 - ⇒ 특히 일부 지방권의 경우 지방변호사회 등은 상고법원에 강력반대하는 반면, 해당 지역 법관들은 무관심한 불균형 현상 해소할 필요
 - ❑ 다수의 침묵하는 소극적 동조자보다는 소수라도 적극적 지지자가 필요한



상황 ⇨ 각급 법원에서 법관 여론의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는 법관들 중심으로 간담회 진행

● **지향점 설정**

- 간담회 참석법관이 향후 상고법원 등과 관련한 각급 법원의 내부 소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허브(HUB) 법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①허브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정한 참석 법관의 선정, ②참석자에 대한 동기 부여 및 ③참석자의 사후 허브 활동 지원 및 점검이 매우 중요함

● **주제**

- 상고법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참석 법관과 행정처에 모두 부담이 큼 ⇨ 상고법원을 중심으로 하되, 사실심 충실화, 경력법관 임용 등 주요 사법정책 현안을 아우르는 주제로 진행할 필요

● **대상 및 주관자**

- **지법부장 간담회** ⇨ 사법정책실장 등 실장급 주관
-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 간담회** ⇨ 사법정책실 심의관 등 주관
⇨ 단,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에 대하여 평심의관이 정보의 면에서 우월하다고 하더라도 ‘설득 및 내부 결속 강화’의 측면에서 동료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부장급 이상의 주관 여부에 관한 추가 검토 및 정책 결정 필요

● **구체적 형태**

- 식사를 곁들여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사적인 모임과 유사하게 진행
- ① 20명 이상의 규모가 되면 강당식 설명회와 유사하게 일방향적인 강의 및 정보제공에 그칠 가능성이 큼 ⇨ 쌍방향적 소통 및 교감 불가능
- ② 참석한 일선 법관들의 입장에서 간담회로 인하여 자신이 적극적으로 상고법원 등의 이슈에 관하여 설명 내지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고 마음 먹을 동기 부여가 매우 부족함 ⇨ 단순히 행사에 동원되었다고 느낄 가



능성이 있음

- ③ 현재는 언론과 코트넷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기본정보는 제공된 상황임 ⇨ 단시간의 간담회를 통한 추가 정보 제공만으로 법관들의 태도 및 감정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정보제공보다 정서적 교감을 통한 동기부여가 중요함**

● 세부 일정(안)

- 7월 4째주(7. 20. ~ 24.) ⇨ ①서울동·남·북·서부지법 각 법원별 **단독 판사 1인, 배석판사 1인 합계 8명** ②서울 소재 모든 법원(고법판사 포함)의 지법 부장급 10명 (서울중앙 및 고등 각 2명, 나머지 법원 각 1명)
- 7월 5째주(7. 27.~31.) ⇨ **서울중앙 단독 및 배석** 각 3명, **행정·가정 단독 및 배석** 각 1명 합계 10명
- 8월 1째주 ⇨ ①수원·인천·의정부 법원별 각 3인(단독판사 2인, 배석판사 1인) ②위 각 법원별 부장판사 2~3명
- 8월 2째주 이후 매주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시행 ⇨ 2째주 춘천 및 대전 권역, 3째주 대구권역, 4째주 부산권역, 9월 1째주 광주권역

● 향후 계획

- 콘텐츠 준비 ⇨ ①사법정책실 및 사법지원실, 인사총괄심의관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Q&A 완성본 활용 ②자료 배포 없이 현장에서 구두로 설명
- 간담회 참석자 확정 ⇨ 기초실, ①법관 여론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 ②리더는 아니더라도 법관 내부 소통의 중심으로서 이른바 의제 설정 기능을 할 수 있는 법관, ③동료 법관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있는 법관
- 평소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소통이 가능한 경우 참석시킴으로써 실질적 소통의 장 모색
- 일정 및 장소 확정, 보고

● 간담회 결과 활용



- ①간담회 결과 정리·분석 ⇨ 하반기 내부소통 및 홍보 전략에 활용
- ②허브 법관들의 향후 활동 지원 ⇨ ①지속적인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소속감 및 책임감 부여 ②상고법원 논의에 관하여 각급 법원 기획법관과 상호보완작용
-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사후 지원 및 점검 철저

4) 각급 법원 소식지 및 법원사람들 등의 매체 활용

- 1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매체를 활용한 홍보
- 코트넷을 통한 정보제공보다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장점
 - 코트넷으로는 하기 어려운 ‘상고법원 경품 퀴즈’ 등의 아이টে도 활용 가능 ⇨ 상고법원, 사실심 충실화, 소수자보호 등을 주제로 8월호부터 실시 예정
- 심도 있는 연재기획도 가능

5) 그 밖의 쏘법원적 홍보·소통 방안

- 가용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야 하는 상황임
 - 그 중 내부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 모색

☑ 참고사례 ⇨ 일본 2009년 재판원제도(배심원 유사) 도입시 쏘법원적 홍보

- ▶ ‘재판원의 여신’ 이라는 홍보학습만화 발간
- ▶ 유명 배우 출연하는 홍보드라마 ‘해매는 벚꽃’ 후지TV 등 방송 및 홈페이지 게시
- ▶ 홍보노래는 물론 TV CM 지속 노출
- ▶ 재판원 제도 관련 홍보용 오락게임 발매 등 전방위 홍보

■ 내부용 상고법원 해설 동영상 속편 제작

- 법안 발의 직전 코트넷에 게시한 ‘핵심정리 상고법원’ 동영상의 속편 제작 ⇨ 해설자는 김○○, 노○○ 판사 가운데 선정
- 당시 동영상에 대한 반응 긍정적이었음
- 법안 발의 이후 상고법원의 경제적 효용 등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제작



■ 전국 법관 토론회 개최 방안

- 사법연수원이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또는 희망 법관이 참여하는 상고법원 관련 토론회 개최
- 일선 법관의 **관심도** 및 상고법원 논의·도입에 관한 **절차적 정당성 강화**
 - 특히 우리법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반대 법관들이 세 결집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전국 법관 토론회를 통해 상고법원의 정당성을 확인받는 절차 요건할 것임

■ 코트넷 상고법원 게시판 효율적 활용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관 상당수가 위 게시판 방문하고 있음
- 상고법원 웹툰 등 對국민 홍보용으로 만든 홍보물을 모르는 법관 다수
⇨ 위 게시판에 게시하여 법원 구성원들부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그 밖의 다양한 홍보물 적극 게시

■ 경력별 법관 연수(9~10월 예정) 활용

- 의견 수렴 및 설득의 계기로 적극 활용
- 사실심 충실화 방안은 사실심 법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과 상고법원안 연내 통과에 관한 긍정적 메시지 전달 필요

■ 법원에서 생성되는 문건에 상고법원 로고 자동 표시 방안

- 문서에 로고 생성 ⇨ 상고법원 접촉 기회 확대를 통한 친밀도 증대
 - 법원의 안내문, 공문 등에 현행 대법원 로고 대신 상고법원 로고 자동 생성
 - 외부는 물론 내부 구성원에게도 효과 있음
 - 상고법원 노출 및 접촉기회 극대화를 위한 **소법원적 홍보 방안의 일환**
- 단 법원이 지나치게 상고법원에 엮매이는 인상을 줄 우려 있고, 홍보 문



구를 법원 생성 문건에 모두 부착함은 법원의 권위에도 영향 줄 수 있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

- ▣ [췁법원적 홍보시 유의사항] 공감대 결여된 채 같은 정보에 단순 반복 노출되는 것은 구성원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음

다. 일부 반대 법관과의 소통 및 대응 방안

1) 상고법원안에 대한 내부 반대 움직임 포착

- 그간 상고법원 추진에 대하여 관망세를 취하던 일부 법관들이 최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면화·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짐
- [반대이유] ①실질적으로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CJ의 인사권 등 **CJ 권한 강화에 대한 반감** + ②**명분상으로** 승진보직 신설 등으로 인한 **사법부 관료화 심화 우려**일 것으로 추정됨
- [핵심그룹]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연구회 탈퇴 후에도 교류지속하면서 논의의 주축이 되고 있음 ⇨ 특히 서울고 등 김○○(15기) 부장판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표면화 배경] ①최근 주요 (보수)언론의 일련의 우호적 보도 및 ②야당 소속 반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 약화 등으로 입법환경상 긍정적 징표 ⇨ 상고법원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였을 것임

▣ 우리법연구회 2015. 5. 정기세미나

- ▶ 매월 열리는 정기세미나에서 상고법원을 주제로 다룸 ⇨ 국회 법사위 2015. 4. 상고법원 공청회 자료집에 수록된 논문 6개를 참석자가 소개한 후 전체 토론
- ▶ 25기 이하 지방법원 부장판사 4명, 31~34기 평판사 8명 총 12명 참석
- ▶ 견해가 11 대 1로 갈린 것으로만 알려짐

2) 선제적 대응 방안 검토 필요성

-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외부로 표출될 경우 ⇨ 입법 추진에 중대한 장애
- [I]외부 반대세력 상대 설득·여론전에 충력을 다해 왔음에도 **상당한 반대세력 엄존함** ⇨ 내부에서까지 반대 목소리 표출될 경우 ①내부 구성원



의 큰 동요뿐 아니라 ②외부 반대세력에 대한 설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음

- ❖ ②특히 반대 법관들이 세 결집을 통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거나 단체행동을 할 경우 치명타가 될 수 있음 ⇨ 현재 논의 주도 법관들은 **단체행동에 나서본 경험이 있거나 성향상 단체행동을 주저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음

☑ 단체행동 가시화 관련 유의할 일정

- ▶ 2015. 7. 23. 故 한○○ 부장판사의 10주기 행사가 열릴 예정 ⇨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다수 결집할 것으로 예상됨
- ▶ 김 부장판사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할 경우 위 행사를 통하여 동조세력 결집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 ▶ 구체적 반대 의견 표명으로 이어질 경우 상고법원 추진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음

● 세 결집 자체를 방지할 필요성

- ❖ ①반대세력이 결집된 이후에는 설득 등을 통하여 일응 **무마된 경우에도 향후 다시 문제될 가능성** 높음
- ❖ ②외부적 의사 표출 여부와 관계없이 **상고법원 추진 및 정상적인 사법행정 시행에 불안요소가** 됨
 - ※ 노조 대응전략, 인사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서도 상고법원 추진에 불안요소가 될 우려로 인해 각 제도의 검토, 시행과정에 부담이 되고 있음
- ❖ ③핵심 그룹이 법관이어서 소통과 설득을 통해 조기에 오해를 해소하고 **타협점을 찾을 여지**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 대응할 필요성** 있음

3) 소통 및 대응 방안 검토

▣ [전제사항] 구체적인 정보 수집 필요

- 반대 법관들의 동향은 아직 첩보 수준 ⇨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①핵심세력은 물론 ②움직임의 목적과 ③세 결집 진행정도 및 고려 중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 있음



- 법관들의 자체적 움직임 여부 ⇨ 재야인사 or 야당의 반대 기류에 주된 영향을 미친 민변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파악할 필요
- **[1] 접근방향] 강온 접근 여부 ⇨ 유화·설득·타협 방안 바람직**
 - 반대 법관들의 성향 및 핵심 그룹의 무게감에 비추어 압박으로 느껴질 경우 반발로 인한 단체행동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 있음
 - 반대 법관들이 구체적인 단체행동을 목전에 두고 있고, 설득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여 압박책 고려함이 타당함
 - 비판 내지 문제의식에 대하여 수용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필요
- **[2] 접촉대상] 주변인을 통한 우회적 설득보다는 핵심 그룹 상대 직접 설득 바람직**
 - 재야인사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김 부장판사 상대 직접 설득할 필요 있음
 - ❖ 유력한 지인 등을 통한 우회적 설득으로 ①신중한 언행의 확률을 높이고, ②반대 활동 시기를 다소 늦추는 정도의 효과는 가능할 것이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 친밀도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파상적 접근이 필요함
 - ❖ 김 부장판사의 반대 행보가 현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반감 및 소외감에 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접근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함으로써 반대의견 표출을 자제할 수 있는 심리 기제 유도할 필요 있음
- **[3] 접촉주체]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설 필요 있음**
 - ①고위 법관을 상대로 한 접촉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서는 것에 별다른 부담 없음
 - ②직접 설득하지 아니할 경우 핵심 그룹 입장에서 본심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음



- 행정처 실장급 이상

■ [4]접촉시기] 현황 파악 즉시 시행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제적 대응 필요하고 미룰 이유 없음

■ [5]설득수단 및 논리] ⇨ 추가 검토 필요

- 진솔한 접근과 의견교환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제거함
- 사법부 현안에 관한 내부 소통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대화의 장을 연 것이고, 특정 세력을 상대로 한 압박절차가 아님을 설명
- 법률안 발의 이후 수정, 보완된 내용을 중점 설명 ⇨ CJ 권한 강화에 대한 비관적 견해를 적극 수용하여 권한을 대폭 내려놓으려는 입장임을 소개

■ ex)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대안 제시 등

■ 반대 입장 외부 공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 돌출 행동 위험성 높은 법관들에 대한 선제적 설득 작업 불발로, 언론 등을 통해 반대 의견 표방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위기 대응체제 가동
- 사전 분위기 감지 긴급요 ⇨ 해당 법관 소속 법원장, 친분 있는 법관 등을 통한 자제 권고
- 언론사 기자 등과의 접촉을 통해, 보도 자제 또는 수위 툰다운 요청
- 보수 언론을 통해 대응 논리 유포 ⇨ 반대 입장 폄하·고립화 전략 추진
- 종래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돌출성 언행 전력 등 부각
- 후속 보도 제지로 부정적 분위기 확산 차단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홍보 방안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5. 7.

상 고 법 원 홍 보 RESTART팀



< 요약 >

I. 검토 배경

-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홍보전략을 모색**해야 할 전환점(Turning-Point) 도래
 - 지금까지 법사위원 등 국회의원에 대한 개별적 접촉·설득 이상으로, 언론을 통한 여론戰에 매진
 - 그러나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상고법원 법률안 통과 가능성 매우 희박
 - 국회 법률안 심의 장기화 대비 **치밀한 입체적 홍보 대책** 필요
 - ❖ 현재까지의 상고법원 홍보 활동을 큰 틀에서 점검 ⇨ 功過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홍보 전략 수립
 - ❖ 현재 언론을 통한 이슈화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도록 지속적인 여론 Boom Up 방안 모색
 - ❖ 특히 일반 국민에 대한 파급력 증강시켜 대세적 공감대 확산시킬 수 있는 홍보 방안 필요
- **과거의 조망을 바탕으로 미래 홍보 방안의 재설계 추진**
 - Zero-Base에서 초기 홍보 착수한다는 오픈 마인드로 효과적인 홍보 방안 구상
 - **最適의 하반기 홍보 전략 설계** ⇨ 상고법원 도입에 **유리한 입법환경 구축**

II. [과거의 조망] 기존의 상고법원 홍보 현황 및 성과, 개선점 등 분석

1. 홍보 현황 등 개요 (2014. 12. 1. ~ 2015. 7. 2.)

[현황①] 법률안 발의 직전인 2014. 12. 1.부터 2015. 7. 2.까지 신문, 방송 등 전통 홍보 매체를 활용한 다각도의 정책 홍보 실시

가. 신문

- [기사량] 2014. 12. 1.부터 2015. 7. 2.까지 일간신문 기사 약 170건



- ▣ 2014. 12. 1.경 대법원장님의 상고법원 도입 의지 천명 기사 후, 지속적으로 긍정적 기사와 이에 대한 반론 기사 등 게재

나. 방송

- ▣ [1단계] 노출期 (2014. 12. 19. 법률안 발의 ~ 2015. 2. 23. 법률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 [YTN] 대법원장님 신년사로 화두 제시/[연합뉴스 TV 등]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 소개
- ▣ [2단계] 랜딩期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후 ~ 2015. 4. 20. 법사위 공청회 개최)
 - [연합뉴스TV] 상고법원 공청회 개최 관련 방송
- ▣ [3단계] 확산期 (법사위 공청회 후 ~ 2015. 7. 초)
 - [JTBC 썰전] 상고법원에 대한 장단점 소개
 - [KBS 등] 서울변호사회 상고법원 찬성, 변협과 이견
 - [연합뉴스TV] 대법원 한해 재판 4만 건...상고법원 해법?

다. 그 외 상고법원 광고 및 이미지 홍보 등

1) 상고법원 광고

- ▣ 상고법원 핸드북 제작·배포(2014. 11.)
- ▣ 네이버, 다음카카오 브랜드검색 광고
- ▣ 일간신문 광고(4. 27.) ⇨ 매일경제 전면 광고 집행

2) 이미지 홍보 등

- ▣ [1차 포스터 게시] '바를 正' 자 활용한 캘리그래픽 홍보 포스터, 지하철 역사 등 게시
- ▣ [1차 홍보 동영상(상고법원의 새로운 시작) 제작·유포]



- 지하철 행선 안내기 및 객차 내 모니터를 통해 송출 (6. 1.~ 6. 30.)/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에 홍보 동영상 탑재

■ 종합적 뉴미디어 홍보 플랜 가동

- 2015. 5. 20.경 상고법원 뉴미디어 홍보팀 구성·운영 ⇨ 온라인 등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한 시각적·입체적 홍보 강화를 위해 2차 홍보 플랜 추진
- 상고법원 홍보 웹툰 제작·게시 (2015. 7. 1.)
 - ‘대법원과 함께 하는 상고법원 이야기’ 웹툰 제작 ⇨ 대법원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게재
- 흥미유발형 2차 홍보 동영상, 포스터 제작 중

2. 홍보 활동 분석

가. 언론보도 분석

■ 1단계 노출期 (2014. 12. 19. 법률안 발의 ~ 2015. 2. 23. 법률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 [성과] 상고법원에 대한 최초 정보 제공 및 인식의 단초 형성
- [시행착오] ①전방위 홍보에 착수하지 못한 사이, BH·법무부·민변發 반대 기고문 등 게재, ②상고법원 홍보 전략 부재
- [상고법원에 대한 여론의 전반적 반응] 새로운 제도 도입 공표되었으나, 충분한 정보 부족

■ 2단계 랜딩期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후 ~ 2015. 4. 20. 법사위 공청회 개최)

- [특징] 상고법원의 필요성에 대한 동아일보 등 보도 이후, 도입 찬성과 반론의 과정 반복



- [가장 효과를 거둔 보도] ①동아일보 2. 27.자 “대법 더 나은 사법서비스 제공 위해 상고법원 도입해야”, ②한국경제, 한국일보 4. 14.자 범칙금까지 상고하는 현실 소개 기사
- [성과] ①동아일보 2. 27.자 기획기사를 필두로 여러 언론을 통해 상고법원 도입 논의에 대한 불씨 점화, ②상고법원의 필요성에 대한 각종 기획기사, 기고 등을 통한 인식 형성 ⇨ 법사위 공청회가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짐
- [시행착오] 언론기고, 기획기사에 집중한 나머지 상고법원 도입 논의가 사법부만의 담론이라는 평가 초래
- [여론의 전반적 반응] ①여전히 일반 대중의 무관심, ②일부 전문가 계층의 상고법원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 확산
- [반대 세력] 기존 대한변협 설문결과에 덧붙여 경실련 법학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경실련 주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상고법원 반대 여론이 팽배하다고 주장

■ 3단계 확산期 (법사위 공청회 후 ~ 2015. 7. 초)

- 법사위 공청회 직후, 다시 반대 세력의 기고문 활발한 게재 및 변호사단체의 조직적 반대여론 확산 강화 시도
- But, 5. 18. 서울변회 상고법원 지지 천명 이후, 5. 28.자 조선일보 1면, 동아일보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분위기 반전
- 지역 변협간 찬성, 반대 입장이 대립교차 발표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상고법원의 노출이 많아지고, 언론사의 관심도 증대됨
- [가장 효과를 거둔 보도] ①5. 28.자 조선일보 1면, 같은 날 동아일보 기획기사, ②매일경제 1면 6. 18.자 경제적 효과 특집 기사



- [성과] 상고법원 입법 통과가 가시화되었다는 우호적 분위기 조성
- [시행착오] 특정 메이저 언론의 기획기사에 대한 반발로, 일부 마이너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서 상고법원 비판 기사를 작성하고자 하는 동기 조성됨

■ 매체 종합 분석

- 조선, 동아, 중앙, 매경, 한경, 법률신문이 상고법원의 필요성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와 기고문을 주로 게재
- 경향, 한국, 한겨레, 내일신문의 경우 상고법원 반대론자의 기고글을 다수 게재, 다만, 기자 작성 우호적 기사도 발견

나. 하반기 홍보 활동을 위한 착안점 등

■ 언론보도 관련

- ① 상고법원 도입의 실제적 필요성, 기대효과를 강조한 기사 효과적
- ② 객관적 지표 제시 필요 ⇨ “**긍정적인 지표가 긍정적인 보도를 낳고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
- ③ 구독률이 높거나 영향력이 큰 언론매체에 적극적인 홍보 필요
- ④ 진보 언론에 대한 컨트롤 필요

■ 기타 홍보 활동 관련

- ① 여러 다양한 홍보 소재 활용한 집중력 있는 홍보 추진
- ② 전파 기능 강한 인터넷, SNS 채널 통한 홍보 진작

Ⅲ. 하반기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홍보 방안

1. 하반기 홍보 활동의 기본 방향, 목표 및 타겟, 일정 재점검



■ 기본 방향

- ① 하반기 법률안 심사 일정에 조용한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
- ② 올해 내 반드시 상고법원 도입하여야 한다는 '필연성', 늦어질 경우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위기감' 조성하는 홍보 전략 모색
- ③ 홍보 활동의 선택과 집중 ⇨ 홍보 활동의 전체적 프레임과 일정은 조율하되, 전반적인 홍보 강도와 수위가 다운되지 않도록 유의

■ 주안점

- ① 상고법원 도입의 불가피성을 주입시키고 상고법원 반대론에 대응할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 확보
- ② 인지도 · 설득력 ·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방법론 모색
- ③ 상고법원 홍보에 대한 피로감을 불식하고, 우회적으로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 정당성 등을 어필할 수 있는 Sub 홍보 소재 개발

■ 예컨대, 사실심 충실화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홍보

■ [목표] 홍보활동 [4단계-상고법원 대세期] 구축 ⇨ 하반기 입법성사 견인

- ① 입법환경에 우호적 여론 조성
 - 여론 주도층과의 호혜적 관계 형성
 - 일선 법원을 포함한 사법부 전체의 홍보역량 결집 및 홍보 마인드 구축
 - 공공 PR(Public Relations)을 통한 일반 대중과의 정보 소통 ⇨ 상고심 제도개선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한 정당성 확보



● ②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반대 기류 약화

■ 상고법원 추진의 장애 및 위험요인 예방·완화·해소

■ [對보수층] 법무부 등 막후 견제 세력의 방해 책동에 대한 방어

■ [對진보층] 민변 등 격렬한 반대 세력의 거친 목소리 잠재우기

■ [타깃] 직접적-일반국민, 간접적-국회의원

● [직접적 타깃] 일반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대중의 관심 유인

■ ①전통 매체에 의한 보도, ②인터넷 등 활용한 대국민 직접 소통 병행

■ 전문가 등 여론 주도층 설득 ⇨ 우군 확보

👤 견제·반대 세력과의 갈등 국면에서 필요한 지지자 획득 ⇨ 상고법원 지원의 寶庫(Reservoir of support) 구축

● [간접적 타깃] 국회의원

■ 일반 국민, 여론 주도층의 찬동 분위기가 국회의원들에게 유입되도록 함

👤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향배와 유권자인 국민의 반응에 매우 민감

■ 여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응 속도와 방향에 따라 실효적인 대국회 설득전략 구축 등 선순환 효과 도모

■ 방법

● ①홍보 매체의 효과적 활용 방안 모색

■ 신문/방송/뉴미디어, 보수/진보, 일간지/법률전문지 등 카테고리별 홍보 플랫폼의 성향별 적합한 활용 방안 수립

■ 신문, 방송 등 전통적 매체 활용 지속 및 우군화

👤 텍스트 메시지 중심의 논증적 홍보 지속

👤 상반기에 다소 부족했던 지상파 방송을 통한 노출 추진



- 예컨대, JTBC 뉴스룸(손○○ 진행), MBC 100분 토론, KBS 심야 토론, SBS 스페셜, KBS 다큐멘터리 3일 등

👤 개별 언론사별 호혜적 관계 형성·유지 방법 모색

❖ 개방화된 온라인 Tool과 쌍방향 미디어 플랫폼 활용 방안 모색 ⇨ 홍보 매체 다층화

👤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를 통한 상고법원 이슈화

● ②신선한 홍보 콘텐츠 발굴

❖ 대중에 대한 인지도·호감과 전문성을 갖춘 홍보源 발굴 ⇨ 언론사 성향에 맞게 매칭하여 시너지 효과 도모

👤 예컨대, 前 대법관님들(조○○, 김○○, 김○○, 박○○, 전○○ 등), 국제재판소 재판관(송○○, 권○○, 정○○, 백○○ 등), 국회의원 등

❖ 국민들에게 올해 꼭 통과시켜야 할 법률안으로 확산·각인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홍보 소재 개발

❖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감성적이며 이미지 강조하는 홍보 소재 제작

👤 예컨대, 흥미유발형 2차 홍보 동영상, 웹툰, 포스터 등

■ 일정

● ①하반기, 길게는 12월까지 여론의 불씨가 소진되지 않도록 장기적, 산발적 홍보 일정 마련하되, 집중공략시기 설정

● ②7, 8월 하반기 초기에 사실심 충실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로 상고법원에 대한 식상감 해소하고 사법부에 대한 다각화된 긍정적 이미지 구현

2. 상고법원 대외 홍보 방안

가. 입법추진 환경 개요



■ 대외 기관 상황

- [국회] ①언론의 우호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부정적 의견 강도 약화, ②그러나 여전히 BH·법무부·민변의 영향 아래 있는 일부 의원들의 견제·반대 기조 유지되고 있는 상황
- [검찰, 법무부] ①전방위적 여론에 대한 부담감 높아짐, ②장관 교체에 따른 변수 발생 가능
- [변호사단체] 긍정적 분위기 확산 ⇨ 반대 단체 출구 전략 모색 중
- [언론] ①상고심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②상고법원 도입 긍정적 기류 확산 ⇨ 한겨레, 경향, 내일 등 난처한 상황

■ 입법 추진 로드맵

- 입법 최종 목표 시점인 하반기 국회(10월, 11월경) 법률안 심사 돌입 이전에 실효적 홍보를 통해 상고법원 대세론 구축 필요

☑ 상고법원 입법추진 로드맵

- ▶ [7월 임시국회] 7. 16./7. 20. 법사위 1소위 안건 상정 및 충실한 논의
- ▶ [8월 임시국회] 회기: 8. 16.경~8. 31. 예상, 1소위에서의 논의 속개 ⇨ 쟁점에 대한 합의점 등 도출
- ▶ [9월 이후 정기국회] ①9월 추석연휴 전까지 국정감사 종료 예상, ②예산안 본격 심사 전인 10월, 11월경 법사위 1소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 추진

나. 홍보 방안 수립을 위한 고려 사항 ⇨ 사법부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 획득

■ 진정성에 대한 주요 지표 제시

- 대법관 다양화로 표방할 수 있는 가치의 다양화 추구 ⇨ 핵심 지표
-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가 반영된 대법원 판결의 지속적인 선고



■ '사실심 충실화'의 논의 주도 필요

- 사실심 충실화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인식 제거
-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 설명 및 구체화를 위한 의견 수렴
- 사실심 법관에 대한 대법원의 신뢰 메시지 부여
 - 사실심이 부실해서 항소, 상고가 많아진다고 믿지 않음을 확인
 - 더 충실한 사실심을 위한 제도적 보완 노력의 일환임을 인식
 - 사실심이 충실하더라도, 늘어난 상고사건 처리를 위한 '법률심 충실화' 대책으로 상고법원 도입이 필요함에 대한 이해를 구함

■ 사법부의 발전을 위한 큰 그림 보여주기 ⇨ 상고법원은 '일부'에 불과

- 외부적으로는 법안 처리 및 통과를 위한 명분 부여
- 내부적으로는 '대법원을 위한 제도'가 아님을 설명

■ 핵심으로 인식되는 부분의 선제적 희생 의지 천명

- 사법부 독립의 본질 또는 핵심이 아니라면, 내외부의 비판을 적극 수용
- 원로 법관 도입을 통한 전관예우 해결방안, 대법관 감축 등

■ 진정성에 대한 신뢰 획득 ⇨ 상고법원 도입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

- 대법원의 여러 노력이 진정성이 있고 믿을 만하다
- 그래서 상고법원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말에 믿음이 생긴다
- 자기희생까지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제도를 막는 것은 좀 그렇다
-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믿어보자



다. 신문을 통한 상고법원 홍보방안

■ 법조출입기자단 설명회

- 대안 구체화 및 사실심 충실화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실시
- 법조출입기자단 대상 질의, 응답

■ 기사 아이템

- 대안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법사위원 전수조사
- 상고심 소송물 가액 + 소송당사자 수
 - 상고심 소송물 가액의 자본시장 평균 수익률 계산하여, 6개월이나 1년 늦어질 경우 경제적 손실 수치화
 - 상고심 당사자 12만명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 ⇨ 신속한 일상 복귀 필요

■ 인터뷰, 제언, 지상토론 등

- 상고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각계 전문가 10인의 제언

■ 긴즈버그 대법관 방한(8/3~8/7)

- 전원합의와 구두변론, 상고허가제의 의미와 대법원의 역할
- 인터뷰 / 좌담회(김○○ 대법관 등)

■ 상고법원 운영 방안에 대한 미국 판사들의 제언

- 고대 강의 ○○(미연방 판사), 연대 강의 ○○○(뉴욕주 판사)
- 지상 인터뷰 '미국의 상고허가제 : 대법원이 심판해야 할 사건은?'

■ 前대법관 인터뷰(사법부 수립일 전후 등 적절한 시기)

■ 대안 구체화 ⇨ 각 대안별 의견 수렴(지면 토론, 인터뷰 등)



- 법학교수 5인의 찬반 의견 등 '대안에 대한 토론 붙이기'

2) 중앙지 기고문

- 15개 중앙지 7월~10까지 1회씩 기고 목표 ⇨ 1주당 1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해럴드경제	서울	서울경제	국민	세계	한국	한국경제	내일	동아	경향	문화	매일경제	한겨레	중앙	조선

3) 지역 언론사 특집기사 및 기고문

4) 기타

- 12월 발의 ~ 6월 임시회 논의 종합 기사
- 지상 좌담회, 논설위원 칼럼 등
- 상고법원 설치 후 사건 분류 및 재판 진행 시뮬레이션
- 제3자 의견서 제출 제도 이슈화
- 대법원장님 취임 4주년 기념 관훈 토론회 등
- 대법관 1인 증원 시 비용 : 상고법원 판사 1인 증원 시 비용
- 상고법원 도입 이후 하급심 판사의 경력 변화 거의 없음
- 일본, 독일 등 상고허가제 실시 국가에서 당사자 및 변호사의 상고심 재판 기회에 대한 기대감(상고심 기회의 불충분 보장에 대한 불만)

라. 방송을 통한 홍보방안

1) 라디오

▣ 시사 프로그램 종류



● 아침프로

- MBC 신○○의 시선집중(매일 아침 7시~9시)
- KBS 안녕하세요 홍○○입니다(매일 아침 06:25~06:56 / 07:15~07:55)
- CBS 박○○의 뉴스쇼(월~금 07:30~09:00 / 토 07:15~09:00)
- TBS 고○○의 열린 아침(매일 아침 7시~9시)

● 저녁프로

- CBS 시사자키 정○○입니다(월~토 18:00~20:00) : 집중 인터뷰 (15~30분)
- KBS 공감토론(노○○ 교수, 월~금 19:20~20:56) : 3~4명 패널 초대

■ 방송 목표

- 월 1회 라디오 방송 노출 목표
- 시사쟁점에 대한 집중 보도 + 인터뷰 형식 + 토론 형식 ➡ 모두 추진
- 적절한 인터뷰 대상자 섭외 필요
 - TBS 고○○ : 서울변회회장 추진 중

2) 지상파

■ 프로그램 종류

- ① 메인 뉴스 속 심층보도
 - MBC 뉴스플러스 형식, 뉴스 속 심층보도 코너 섭외
- ② 뉴스 스튜디오 대담
 - KBS 밤 11시 뉴스라인 - 이슈&토크 : 전문가 설명과 분석(5-6분)
 - SBS 밤 12시 35분 나이트라인 - 배○○의 0시의 인터뷰 : 전문가 초대



인터뷰(3-4분)

● ③ 심층보도

■ KBS 취재파일 K(금 22:50) / MBC 시사매거진 2580(화 22:00)

● ④ 토론

■ MBC 100분 토론(화 24:20-01:40) / KBS 생방송 심야토론(금 23:40-01:00)

● ⑤ 좌담

■ KBS 시사진단 / KBS 일요진단 /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 방송 목표

● ①은 7-8월, ②는 10월경 집중 추진

● ③, ④, ⑤는 각 프로그램 장, 단점 검토 필요 ➔ 방송국별 1개씩 9-10월경 추진

3) 종편

■ JTBC, 채널A, TV조선 중심

● JTBC 뉴스룸, 채널A 쾌도난마, TV 조선 장○○의 시사토크, 시사토크 판 등 주요 시사 프로그램 보도 추진

● 방송국 섭외 + 주요 출연진에 대한 설득 병행 필요

성명	경력 등	주요 출연 채널	비
김○○	변호사	TV 조선, JTBC, 채널 A, YTN, MBN 등	
여○○	변호사	TV 조선, JTBC, 채널 A, YTN, MBN 등	
정○○	변호사	TV 조선, JTBC, YTN, MBN 등	
양○○	변호사	TV 조선, JTBC, MBN 등	0
백○○	변호사	TV 조선, YTN, MBN 등	
장○○	변호사, 참여연대	JTBC, MBN 등	
양○○	변호사	YTN, MBN 등	
손○○	변호사, 진보성향	TV 조선, 채널A, YTN	



김○○	변호사, 검찰출신	JTBC, YTN, MBN 등	
박○○	변호사	채널 A, YTN, MBN 등	
최○○	변호사, 대한변협 대변인	TV 조선, YTN, MBN 등	
그 외 강○○, 전○○, 강○○ 변호사 등			

마. 학술지, 토론회 등

1) 논문 발간

- 경제적 효과(허○○ 교수)
- 헌법 쟁점 정책연구용역(김○○ 교수)
- 상고법원안 설명 및 대안 소개(강○○ 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

2) 세미나 등

- 공동 학술 세미나(민소법-형사법-공법) 또는 학회별 토론회
 - 주제 : “상고법원 + 하급심 강화”
 - 형식 : 법사위 위원장 주최 정책토론회 형식 고려
- 사실심 충실화에 대한 정책토론회
 - 학술세미나와 차별화 ➔ 실무가 중심
 - 전해철 의원실 주최 고려
- 사실심 학술 세미나
 - 정책연구원 or 법원 커뮤니티 + 외부 학회 or 대학연구소





하반기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홍보 방안

2015. 7.

상고법원 홍보 RESTART팀

IV. 검토 배경

▣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홍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전환점(Turning-Point) 도래

- 지금까지 법사위원 등 국회의원에 대한 개별적 접촉·설득 이상으로, 언론을 통한 여론전에 매진 ⇨ BH·법무부·민변 등 영향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명분을 가지고 돌아설 수 있도록 유인
-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상고법원 법률안 통과 가능성 매우 희박
- ①법사위 1소위에서의 충실한 논의 없이 6월 임시국회 종료, ② 7월 임시국회 첫 법사위 1소위(7. 16.)에서도 안전 상정되었으나 논의 불발, 7. 20. 2번째 1소위에서도 충실한 논의 장담할 수 없는 상황
- 경기침체 회복·경제 활성화에 국가적 관심과 역량 집중되어 있는 상황 ⇨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전방위 여론 조성 등 강공 드라이브는 기관 이기주의로 비쳐져 역효과를 낼 수 있음
- 국회 법률안 심의 장기화에 대비한 치밀한 입체적 홍보 대책 필요
- 현재까지의 상고법원 홍보 활동을 큰 틀에서 점검 ⇨ 功過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홍보 전략 수립
- 현재 언론을 통한 이슈화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도록 지속적인 여론 Boom Up 방안 모색



- ❖ 특히 일반 국민에 대한 파급력 증강시켜 대세적 공감대 확산시킬 수 있는 홍보 방안 필요

▣ 과거의 조망을 바탕으로 미래 홍보 방안의 재설계 추진

- Zero-Base에서 초기 홍보 착수한다는 오픈 마인드로 효과적인 홍보 방안 구상
- 最適의 하반기 홍보 전략 설계 ⇨ 상고법원 도입에 유리한 입법환경 구축

V. [과거의 조망] 대국민 홍보 방안 수립을 위한 상고법원 홍보 현황 및 성과, 개선점 등 분석

1. 홍보 현황 등 개요 (2014. 12. 1. ~ 2015. 7. 2.)

[현황①] 법률안 발의 직전인 2014. 12. 1.부터 2015. 7. 2.까지 신문, 방송 등 전통 홍보 매체를 활용한 다각도의 정책 홍보 실시

가. 신문

- ▣ [기사량] 2014. 12. 1.부터 2015. 7. 2.까지 상고법원에 관한 일간신문 기사 약 170건 (대법원 법원 관련기사 스크랩마스터 기준)
- ▣ 신문 지면을 통한 상고법원 홍보
 - 도입의지 피력
 - ❖ 대법원장님, 사실심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발표와 더불어 상고법원 도입 의지 천명
 - ❖ 2014. 12. 1.부터 12. 9.까지 조선, 중앙, 경향 등 해당 내용 기사화 ⇨ 상고법원에 대한 공론화의 단초 제기



단계	긍정적 기사(기획기사 등)	부정적 기사(반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3. 조선일보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 (오○○ 울산대 총장) ▪ 4.14. 한국경제 "범칙금 6만원도 불복...대법 상고심 작년 3만 8천건"(양○○ 기자) ▪ 4.14. 한국일보 "범칙금까지 상고...사건 넘치는 대법 어쩌나"(김○○ 기자) ▪ 4.15. 동아일보 "대법관 증원보다 상고법원 설치가 답이다" (이○○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7. 한국일보 "법학자 74%가 상고법원 신설 반대"(장○○ 기자)
<p>3단계 - 확산기 (2015. 4. 20. 법사위 공청회 개최 ~ 법사위 1소위 안건 상정 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8. 조선일보 "대법원에 年3만7000건... "기다리기 지친다, 졸속재판도 싫다"" (최○○ 기자) ▪ 5.28. 동아일보 "상고심 전담 법원 도입 찬성 64%" (조○○ 기자) ▪ 5.28. 법률신문 사설 "상고심 제도 개선 위한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 6.1. 조선일보 "상고심 개편 이젠 결론 내자" (최○○ 디지털뉴스본부 차장) ▪ 6.1. 한국일보 "대법 사건 적체 해소하고 국민 권리구제에 충실한 대안"(손○○ 기자) ▪ 6.1. 법률신문 "미국 연방대법원 개혁이 우리 상고법원 신설 논의에 시사하는 점" (윤○○ 서울남부지방법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9. 경향신문 "상고법원제, 올바른 대법원 개혁 아니다"(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5.12. 한겨레신문 "대법관 증원, 진지한 검토를"(민○○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 5.20. 내일신문 "상고법원제 법안의 위험성"(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5.20. 한국일보 "상고법원은 답이 아니다"(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단계	긍정적 기사(기획기사 등)	부정적 기사(반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5. 헤럴드경제 "'상고법원 찬성' 법조계 확산...덩달아 '사시존치론'도 탄력" (함○○, 김○○ 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6. 한겨레 "[왜냐면] 대법관 증원은 해당 아니다" (송○○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8. 매일경제 "대법 지난해 9500건 "상고 이유 안된다" 기각" (이○○ 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8. ①매일경제 "대법관 1인당 年 3천건 대기 중...3년 넘기는 상고심 수두룩"(이○○, 김○○ 기자), ②"소송법원 도입, 경제효과 최대 70조", ③"상고사건 상당수가 단순한 벌금 사건 `혈세낭비`"(김○○ 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8. ①법률신문 "'상고법관 추천위' 구성...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 필요", ②"순회재판 도입... 상고법원 판사 경력도 상향조정" (홍○○ 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3. 동아일보 "전관예우와 상고법원" (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 법률신문 "상고법원 도입 시 최대 69조원 경제성장 효과" (이○○ 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7.2. 동아일보 "상고법원제 위헌 아니다" (조○○ 기자) 	

나. 방송

■ [1단계] 노출期 (2014. 12. 19. 법률안 발의 ~ 2015. 2. 23. 법률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 대법원장님 신년사로 화두 제시

▶ [YTN] 상고법원 설치 올해 현실화되나?(1. 4.)

■ 상고법원 추진 관련 방송

▶ [연합뉴스TV] 대한변협, 변호사 51%, 상고법원보다 대법관 증원 선호(1. 5.)

▶ [YTN] 올해 안 상고법원 설치 물건너 가나(2. 20.)

막말 댓글 판사, 사채왕 뇌물 수수, 판사의 대학후배 성추행 등 사건 잇따라 발생하여 추진 동력 떨어질 것을 언급

■ [2단계] 랜딩期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후 ~ 2015. 4. 20. 법사위



공청회 개최)

▶[연합뉴스TV]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 개최 관련 방송(4. 20.)

■ [3단계] 확산期 (법사위 공청회 후 ~ 2015. 7. 초)

▶[JTBC 썰전 위클리 어워드] 상고법원에 대한 장단점 소개(5. 7.)

- 강○○ “판결이 늦는 건 판결을 거부한 것과 같다(찬성)”

- 이○○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반대)”

▶[KBS, 연합뉴스, MBN, YTN] 서울변호사회 상고법원 찬성, 변협과 이견(5. 18.)

▶[KBS, SBS, MBC, MBN, 연합뉴스, YTN, OBS] 상고법원 찬반 놓고 변호사 단체들 대립(5. 19.)

▶[연합뉴스TV] 상고법원 논의 1년, 변호사 업계 찬성론 고개(6. 15.)

▶[연합뉴스TV] 대법원 한해 재판 4만 건...상고법원 해법?(6. 27.)

▶[연합뉴스TV] 하반기 법조계 이슈는?...상고법원 설치 등 쟁점(7. 2.)

다. 그 외 상고법원 광고 및 이미지 홍보 등

1) 상고법원 광고

■ 상고법원 핸드북 제작·배포(2014. 11.)

- 국회, 전국법원, 기자 등에 배포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

■ 네이버, 다음카카오 브랜드검색 광고

- 2015. 3. 4.부터 현재까지 계속 집행 중

■ 일간신문 광고(4. 27.)

- 40대 구독율 높은 매일경제(발간부수 77만부) 전면 광고 집행
- 광고소재 ⇨ ‘바를 正’ 자 활용한 캘리그래픽 홍보 포스터

2) 이미지 홍보 등

■ [1차 포스터 게시] ‘바를 正’ 자 활용한 캘리그래픽 홍보 포스터

- [게시 장소] ①각급 법원, ② 각급 법원 인근 3km 이내의 지하철, KTX 역사 게시판(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체



역사에 게시) ⇨ 전국 43개 지하철역에 부착

- [게시 기간] 지하철역사 게시는 5. 18.부터 동시게재 시작, 게시 기간은 역사별로 상이(최소 1주일부터 연중 상시 노출까지)

▣ [1차 홍보 동영상(상고법원의 새로운 시작) 제작·유포]

- 지하철 행선 안내기 및 객차 내 모니터를 통해 송출 (6. 1.~ 6. 30.)
- ▣ 집행 노선 : 서울 지하철 1, 3, 4호선 50개 역사 및 2호선 객차 내 모니터



-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에 홍보 동영상 탑재

▣ 종합적 뉴미디어 홍보 플랜 가동

- 2015. 5. 20.경 상고법원 뉴미디어 홍보팀 구성·운영 ⇨ 온라인 등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한 시각적·입체적 홍보 강화를 위해 2차 홍보 플랜 추진
- ▣ 일반 대중의 상고법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쉽고 감성적이며 흥미 위주의 홍보 소재, 방법 고안
- ▣ 개방화된 온라인 Tool과 쌍방향 미디어 플랫폼 활용 방안 모색
- 상고법원 홍보 웹툰 제작·게시 (2015. 7. 1.)
- ▣ 웹툰 유명작가 ‘김○○’ 와 협업으로, ‘대법원과 함께 하는 상고법원 이야기’ 웹툰 제작 ⇨ 12회 연재의 ‘생활툰’ 방식으로 상고법원 제도 설명과 아울러 대법관님·재판연구원·법관들의 바쁜 일상, 재판 관련 에피소드 등을 모티브로 자연스럽게 그려낼 예정



- 웹툰 1회분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에 게재
- 재미있으면서도, 상고법원 제도 필요성 등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라는 평
- 다른 홍보 소재에 비해 높은 조회 수 기록 중 ⇨ 게시 1주일 만에 ①대법원 페이스북 노출횟수 11,784회, 클릭 수 1,874회, 좋아요 수 148회(평균 게시물 1건당 좋아요 수 40~50회), ②대법원 트위터 노출횟수 5,564회, 리트윗 수 20회(평균 게시물 1건당 리트윗 수 5~10회), ③대법원 블로그 조회 수 800회 이상
- 향후 약 10일 간격으로 후속 웹툰 제작(웹툰 2회분 7. 20. 게재 예정) ⇨ 지하철 행선기, SNS, 인터넷 포털 등 노출범위 및 전파력 높은 플랫폼에 탑재
- 흥미유발형 2차 홍보 동영상, 포스터 제작 중
- 압축된 메시지 전달하고, 단순·간결·세련된 이미지 표출하는 데 주안점

2. 홍보 활동 분석

가. 언론보도 분석

- **1단계 노출期 (2014. 12. 19. 법률안 발의 ~ 2015. 2. 23. 법률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 [성과] 상고법원에 대한 최초 정보 제공 및 인식의 단초 형성
 - [시행착오] ①법률안 발의 직후 전방위 홍보에 착수하지 못한 사이, BH·법무부·민변發 반대 기고문 등 게재 ⇨ 국회 법사위 국회의원, 전문위원 등에게 유입되어 부정적 기류 확산, ②최○○ 판사 등 법관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여론 분위기 위축되었을 때, 위기 대응 대처에 급급한 나머지 상고법원 홍보 전략 부재
 - [상고법원에 대한 여론의 전반적 반응] 새로운 제도 도입 공표되었



으나, 생경하고 충분한 정보 부족

- [반대 세력] ①학계(임○○ 교수 등), 대한변협(하○○ 회장)의 위헌론, 4심제 등 법리적 문제점 제기, ②국회의원 로비 입법 지적

■ 2단계 랜딩期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후 ~ 2015. 4. 20. 법사위 공청회 개최)

- [특징] 상고법원의 필요성에 대한 동아일보 등 보도 이후, 도입 찬성과 반론의 과정이 반복
 - 법리공방(위헌론, 4심제) ⇨ 2015. 4.부터는 법리논쟁에서 탈피 ⇨ 2년 이상 계류된 상고사건의 수와 범칙금 6만원도 상고하는 현실 등 상고심의 현실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기사 게재
- [가장 효과를 거둔 보도] ①동아일보 2. 27.자 “대법 더 나은 사법서비스 제공 위해 상고법원 도입해야”, ②한국경제, 한국일보 4. 14.자 범칙금까지 상고하는 현실 소개 기사
- [성과] ①동아일보 2. 27.자 기획기사를 필두로 여러 언론을 통해 상고법원 도입 논의에 대한 불씨 점화, ②상고법원의 필요성에 대한 각종 기획기사, 기고 등을 통한 인식 형성 ⇨ 법사위 공청회가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짐
- [시행착오] 언론기고, 기획기사에 집중한 나머지 상고법원 도입 논의가 사법부만의 담론이라는 평가 초래
- [여론의 전반적 반응] ①여전히 일반 대중의 무관심, ②일부 전문가 계층의 상고법원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 확산
- [반대 세력] 기존 대한변협 설문결과에 덧붙여 경실련 법학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경실련 주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상고법원 반대 여론이 팽배하다고 주장

■ 3단계 확산期 (법사위 공청회 후 ~ 2015. 7. 초)

- 법사위 공청회 직후, 다시 반대 세력의 기고문 활발한 게재 및 변호



사단체의 조직적 반대여론 확산 강화 시도

- But, 5. 18. 서울변회 상고법원 지지 천명 이후, 5. 28.자 조선일보 1면, 동아일보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분위기 반전
- 지역 변협간 찬성, 반대 입장이 대립교차 발표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고법원의 노출이 많아지고, 언론사의 관심도 증대됨
 - 판사들이 상고법원 지지 전화하였다는 대한변협 성명과 그에 따른 비판적 보도는 우호적 여론 확산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언론의 집중보도로 노이즈 마케팅 효과도 함께 발생
- ①대구, 인천, 제주 지역변호사단체의 연이은 찬성 성명, ②법사위원들의 찬성 입장이 다수라는 설문결과(뉴시스, 매경), ③동아일보 국민 상대 여론조사 발표 이후, 반대 여론이 다소 잦아드는 현상 발생 (2015. 6. 이후)
- 매경의 6. 18.자 상고법원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기사는 다소 그 분석 보고서에 무리가 있다는 반응도 있었으나, 상고법원 도입 분위기 고조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 미침
- [가장 효과를 거둔 보도] ①5. 28.자 조선일보 1면, 같은 날 동아일보 기획기사, ②매일경제 1면 6. 18.자 경제적 효과 특집 기사
- [성과] 상고법원 입법 통과가 가시화되었다는 우호적 분위기 조성
- [시행착오] 특정 메이저 언론의 기획기사에 대한 반발로, 일부 마이너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서 상고법원 비판 기사를 작성하고자 하는 동기 조성됨
 - 예컨대, 7. 8.자 국민일보 특집 『상고법원 논의 1년, 문제 없나』 기사 ↵ 조선, 동아, 매일경제에 기사 집중된 데 대한 불만과 동아일보 국민 상대 상고법원 찬·반 여론조사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 비롯

■ 매체 종합 분석

- 조선, 동아, 중앙, 매경, 한경, 법률신문이 상고법원의 필요성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와 기고문을 주로 게재

- 경향, 한국, 한겨레, 내일신문의 경우 상고법원 반대론자의 기고글을 다수 게재하였으나,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경우에는 찬반 주장을 균형있게 기술하거나 상고법원에 우호적인 기사도 다수 발견됨

나. 그 외 홍보 활동 분석

■ 브랜드검색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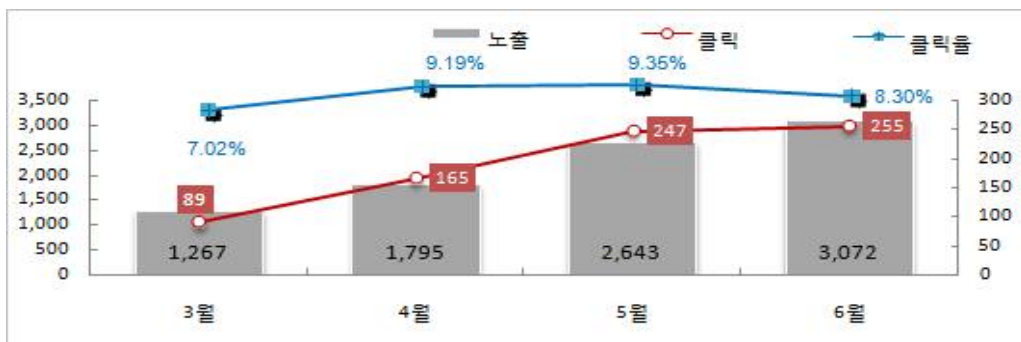
- 노출률 등 (2. 2. ~ 6. 28.)

■ [네이버] 노출 1,333,363회, 클릭 5,507회, 클릭율 0.41%

■ [다음] 노출 729,017회, 클릭 5,601회, 클릭율 0.77%

■ [합계] 노출 2,062,380회, 클릭 11,108, 클릭율 0.54%

👤 월별추이(합계)



■ 지하철 행선 안내기 및 객차 내 모니터 광고

- 지하철 광고 예상 노출률

■ 지하철 이용객수 1일 평균 1,000만 명 이상, 그중에서도 지하철 1~4호선은 전체 이용객의 절반이 넘는 600만 명 이상 이용

호선	1일 승하차 인원수(%)
1호선	584,092명(5.0%)
2호선	3,072,006명(26.3%)



3호선	1,042,055명(8.9%)
4호선	1,231,235명(10.5%)

- 지하철 영상광고 매체 평균 시청률은 16% 수준으로 지하철 1~4호선에서 1일 평균 96만 여명의 승객에게 노출된 것으로 예상

■ SNS 광고

- 상고법원 SNS 광고(5. 4. ~ 5. 11.) 성과

매체	게시물 노출 횟수 ¹⁾	영상 조회 수 ²⁾
페이스북	3,669,240(광고전 2,400)	11,312(광고전1,312)
트위터	828,770(광고전 6,230)	2,799(광고전 12)
유튜브	205,270(광고전 301)	27,753(광고전 301)
총계	4,703,280	41,864

- 총 8일 간 광고집행 후 게시물 노출 및 조회 수 급증
- 상고법원 홍보동영상 SNS 홍보 성과(2015. 7. 2. 기준)
 - [페이스북] 조회수 212,100회(4. 2. 게재)
 - [트위터] 노출수 835,170회, 리트윗 313회, 관심글 244회
 - [유튜브] 조회수 30,859회(4. 1. 게재)

다. 하반기 홍보 활동을 위한 착안점 등

■ 언론보도 관련

- ① 상고법원 도입의 실제적 필요성, 기대효과를 강조한 기사 효과적
 - “범칙금 6만원까지 상고, 대법원 상고 연3만 7천건, 사건 적체 해소..기다리다 지친다” 등 상고법원 도입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한 기사가 주목 받음

1) 영상을 게시한 게시물 자체가 노출되는 횟수를 의미함
 2) 실제로 영상이 재생된 횟수(매체에 따라 자동/수동 재생)



- 법리논쟁보다 **상고법원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기사 방향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② **객관적 지표 제시 필요** ⇨ “**긍정적인 지표가 긍정적인 보도를 낳고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

- 상고법원에 대한 국민의 찬반 설문조사결과, 상고법원 설치 이후의 효과를 부각시킬 수 있는 통계 분석자료, 연구용역결과, 학술자료 등 객관적 지표 변화 추이를 알려 설득력 높이는 방향 모색 ⇨ 상고법원 국민 여론조사결과 등 추가적인 콘텐츠 개발 필요

- ③ **구독률이 높거나 영향력이 큰 언론매체에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조선, 동아 등 메이저 언론의 긍정적 기사가 가져온 긍정적 반향 매우 큼

- 반면, 충청투데이 4. 19.자 상고법원에 대한 지상좌담회가 보도된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음

- 다만, 구독률이 조선, 동아, 중앙에 비해 높지 않은 중위 언론사(세계, 국민, 한국 등)에 게재된 기사라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기사 검색을 주로 하는 20 ~ 50대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음

- ④ **진보 언론에 대한 컨트롤 필요**

- 경향, 한겨레 등의 진보 계층에 대한 여론 조성 기능에도 세심한 주의 기울여야 함 ⇨ 상고법원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기사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어적 홍보활동 병행 필요

■ 기타 홍보 활동 관련

- ① **여러 다양한 홍보 소재 활용한 집중력 있는 홍보 추진**

- 예컨대, 상고법원 홍보포스터를 보고 이어 지하철역 행선기에서 상고법원 동영상 본 경우, 반복노출에 따른 인지도 및 각인효과 상승 ⇨ 이후 상고법원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 관심을 가지고 정독, 숙지할 가능성 높음

- 웹툰, 동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입체적·시각적 홍보물 활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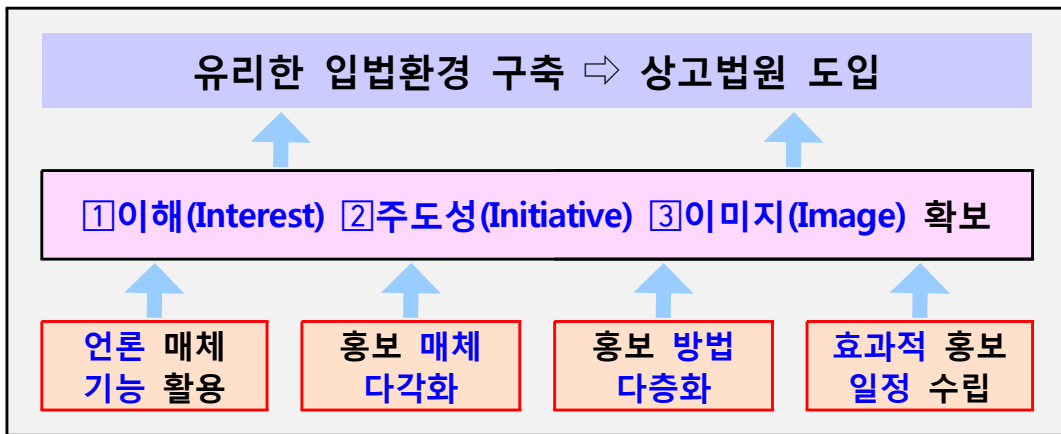
- 기존 홍보 콘텐츠의 재가공, 새로운 홍보 콘텐츠의 제작·유포로 상고법



원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 제고 노력 지속 필요

- [2]전과 기능 강한 인터넷, SNS 채널 통한 홍보 진작
 - 인터넷, SNS 홍보는 짧은 시간에 높은 노출 수를 기록하여, 광범위한 홍보 효과 거둘 수 있음 ⇨ 이하의 바이럴 마케팅 전략 등 모색
 - 아울러, 사법부 내부 홍보 강화를 통해,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활용한 홍보 파급력 확대 추진

VI. 하반기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홍보 방안



1. 하반기 홍보 활동의 기본 방향, 목표 및 타깃, 일정 재점검

■ 기본 방향

- ①하반기 법률안 심사 일정에 조용한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
- ②올해 내 반드시 상고법원 도입하여야 한다는 '필연성', 늦어질 경우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위기감' 조성하는 홍보 전략 모색
- ③홍보 활동의 선택과 집중 ⇨ 홍보 활동의 전체적 프레임과 일정은 조율하되, 전반적인 홍보 강도와 수위가 다운되지 않도록 유의

■ 주안점

- ①상고법원 도입의 불가피성을 주입시키고 상고법원 반대론에 대응할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 확보



- ②인지도·설득력·과급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방법론 모색
 - ③상고법원 홍보에 대한 피로감을 불식하고, 우회적으로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 정당성 등을 어필할 수 있는 Sub 홍보 소재 개발
 - 예컨대, 사실심 충실화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홍보
- **[목표] 홍보활동 [4단계-상고법원 대세期] 구축 ⇨ 하반기 입법성사 견인**
- ① 입법환경에 우호적 여론 조성
 - 여론 주도층과의 호혜적 관계 형성
 - 일선 법원을 포함한 사법부 전체의 홍보역량 결집 및 홍보 마인드 구축
 - 공공 PR(Public Relations)을 통한 일반 대중과의 정보 소통 ⇨ 상고심 제도개선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한 정당성 확보
 - ②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반대 기류 약화
 - 상고법원 추진의 장애 및 위험요인 예방·완화·해소
 - [對보수층] 법무부 등 막후 견제 세력의 방해 책동에 대한 방어
 - [對진보층] 민변 등 격렬한 반대 세력의 거친 목소리 잠재우기
- **[타깃] 직접적-일반국민, 간접적-국회의원**
- [직접적 타깃] 일반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대중의 관심 유인
 - ①전통 매체에 의한 보도, ②인터넷 등 활용한 대국민 직접 소통 병행
 - 전문가 등 여론 주도층 설득 ⇨ 우군 확보
 - 👤 견제·반대 세력과의 갈등 국면에서 필요한 지지자 획득 ⇨ 상고법원 지원의 寶庫(Reservoir of support) 구축
 - [간접적 타깃] 국회의원



- ❖ 일반 국민, 여론 주도층의 **찬동 분위기가 국회의원들에게 유입**되도록 함
 - 👤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향배와 유권자인 국민의 반응에 매우 민감
- ❖ 여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응 속도와 방향에 따라 **실효적인 대국회 설득전략 구축 등 선순환 효과** 도모

▣ 방법

● ① 홍보 매체의 효과적 활용 방안 모색

- ❖ 신문/방송/뉴미디어, 보수/진보, 일간지/법률전문지 등 **카테고리별 홍보 플랫폼의 성향별 적합한 활용 방안** 수립
- ❖ 신문, 방송 등 전통적 매체 활용 지속 및 우군화
 - 👤 텍스트 메시지 중심의 논증적 홍보 지속
 - 👤 상반기에 다소 부족했던 지상파 방송을 통한 노출 추진
 - 예컨대, JTBC 뉴스룸(손○○ 진행), MBC 100분 토론, KBS 심야 토론, SBS 스페셜, KBS 다큐멘터리 3일 등
 - 👤 개별 언론사별 호혜적 관계 형성 · 유지 방법 모색
- ❖ 개방화된 온라인 Tool과 쌍방향 미디어 플랫폼 활용 방안 모색 ⇨ **홍보 매체 다층화**
 - 👤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를 통한 **상고법원 이슈화**

● ② 신선한 홍보 콘텐츠 발굴

- ❖ 대중에 대한 인지도 · 호감과 전문성을 갖춘 홍보源 발굴 ⇨ 언론사 성향에 맞게 매칭하여 시너지 효과 도모
 - 👤 예컨대, 前 대법관님들(조○○, 김○○, 김○○, 박○○, 전○○ 등), 국제재판소 재판관(송○○, 권○○, 정○○, 백○○ 등), 국회의원 등
- ❖ 국민들에게 올해 꼭 통과시켜야 할 법률안으로 확신 · 각인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홍보 소재** 개발
- ❖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감성적이며 이미지 강조하는 홍보 소재



제작

👤 예컨대, 흥미유발형 2차 홍보 동영상, 웹툰, 포스터 등

▣ 일정

- ①하반기, 길게는 12월까지 여론의 불씨가 소진되지 않도록 장기적, 산발적 홍보 일정 마련하되, 집중공략시기 설정
- ②7, 8월 하반기 초기에 사실심 충실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로 상고법원에 대한 식상감 해소하고 사법부에 대한 다각화된 긍정적 이미지 구현

2. 상고법원 대국민 홍보 방안

가. 입법추진 환경 개요

▣ 대외 기관 상황

- [국회] ①언론의 우호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부정적 의견 강도 약화, ②그러나 여전히 BH·법무부·민변의 영향 아래 있는 일부 의원들의 견제·반대 기조 유지되고 있는 상황
- [검찰, 법무부] ①전방위적 여론에 대한 부담감 높아짐, ②장관 교체에 따른 변수 발생 가능
- [변호사단체] 긍정적 분위기 확산 ⇨ 반대 단체 출구 전략 모색 중
- [언론] ①상고심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②상고법원 도입 긍정적 기류 확산 ⇨ 한겨레, 경향, 내일 등 난처한 상황

▣ 입법 추진 로드맵

- 입법 최종 목표 시점인 하반기 국회(10월, 11월경) 법률안 심사 도입 이전에 실효적 홍보를 통해 상고법원 대세론 구축 필요

☑ 상고법원 입법추진 로드맵

- ▶ [7월 임시국회] 7. 16./7. 20. 법사위 1소위 안건 상정 및 충실한 논의
- ▶ [8월 임시국회] 회기: 8. 16.경~8. 31. 예상, 1소위에서의 논의 속개 ⇨ 쟁점에



대한 합의점 등 도출

- ▶ [9월 이후 정기국회] ①9월 추석연휴 전까지 국정감사 종료 예상, ②예산안 본격 심사 전인 10월, 11월경 법사위 1소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 추진

나. 홍보 방안 수립을 위한 고려 사항 ⇨ 사법부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 획득

▣ 진정성에 대한 주요 지표 제시

- [핵심 지표] 대법관 다양화로 표방할 수 있는 가치의 다양화
-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가 반영된 대법원 판결의 지속적인 선고

▣ '사실심 충실화' 논의 주도

- 사실심 충실화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인식 제거
-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 설명 및 구체화를 위한 의견 수렴
- 사실심 법관에 대한 대법원의 신뢰 메시지 부여
 - 사실심 부실이 항소, 상고의 주된 원인 아니고, 더 충실한 사실심을 위한 제도적 보완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사실심이 충실하더라도, 늘어난 상고사건 처리를 위한 '법률심 충실화' 대책으로 상고법원 도입이 필요함에 대한 이해 요청

▣ 사법부의 발전을 위한 큰 그림 보여주기 ⇨ 상고법원은 '일부'에 불과

- 외부적으로는 법안 처리 및 통과를 위한 명분 부여
- 내부적으로는 '대법원을 위한 제도'가 아님을 설명

▣ 핵심으로 인식되는 부분의 선제적 희생 의지 천명

- 사법부 독립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외부 비판 적극 수용



- 상고법관 임명에 대한 대법원장의 인사권 내려놓기, 원로 법관 제도 (Senior Judge) 도입을 통한 전관예우 해결, 대법관 감축 등

▣ **진정성에 대한 신뢰 획득 ⇨ 상고법원 도입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

- ①대법원의 여러 노력이 진정성이 있고 믿을 만하다
- ②그래서 상고법원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말에 믿음이 생긴다
- ③자기희생까지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제도를 막는 것은 좀 그렇다
- ④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믿어보자

다. 신문을 통한 홍보 방안

1) 기사 아이템

▣ **①대안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법사위원 전수조사**

- ▣ 종전의 찬반 성향 분석 기사에서 진일보한, 구체적 대안 관련 개별 법사 위원들의 의견 수렴하여 기사화
- ▣ 상고법원 도입을 기정사실화하여 공론화시키는 홍보 효과 가능
- ▣ 하반기 입법 성사를 위한, 개별 법사위원별 설득 논리 구축에도 기여

▣ **②상고심 소송물 가액, 소송당사자 숫자 등 객관적 수치 자료 제시**

- ▣ 상고심 소송물 가액의 자본시장 평균 수익률 계산하여, 6개월이나 1년 늦어질 경우 경제적 손실 수치화
- ▣ 상고심 당사자 12만명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 ⇨ 신속한 일상 복귀 필요

▣ **③인터뷰, 제언, 지상토론 등**

- 상고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각계 전문가 10인의 제언
- ▣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 등 분야별 10인씩 선정 ⇨ 상고법원에 대한 사회 주도층 인사들의 다양한 시각 제시
- 긴즈버그 대법관 방한(8. 3. ~ 8. 7.) 활용



- 방안 기간 중, ①인터뷰, ②좌담회(김○○ 대법관 등 참여) 등 개최
- [인터뷰 등 주제] “전원합의와 구두변론”, “상고허가제의 의미와 대법원의 역할” 등
- 상고법원 운영 방안에 대한 미국 판사들의 제언
- 미연방 판사 ○ ○(고려대 강의 활용), 뉴욕 주 판사 ○ ○ ○(연세대 강의 활용)
- [인터뷰 주제] ‘미국의 상고허가제 : 대법원이 심판해야 할 사건은?’
- 前대법관 인터뷰
- 조○○, 김○○, 김○○, 박○○, 전○○ 등
- 대한민국 법원의 날(9. 13.) 전후 등 적절한 시기 채택
- 대안 구체화 ⇨ 각 대안별 의견 수렴(지면 토론, 인터뷰 등)
- 법학교수 5인의 찬반 의견 등 ‘대안에 대한 토론 붙이기’

■ 4 중앙지 기고문

- 15개 중앙지 7월~10까지 1회씩 기고 목표 ⇨ 1주당 1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해럴드경제	서울	서울경제	국민	세계	한국	한국경제	내일	동아	경향	문화	매일경제	한겨레	중앙	조선

■ 5 지역 언론사 특집기사 및 기고문

- 각 지역 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 역할하는 유력지 적극 활용 ⇨ 공감대 형성의 직접적 동인이 될 수 있고, 간접적으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박 수단 될 수 있음
- 문경예천 지역(이○○ 간사 지역구)의 매일신문에 ‘신속 입법 촉구’ 사설 게재 등
- 춘천 지역(김진태 의원 지역구)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접촉 ⇨ 우



호적 사설 또는 사내 칼럼 추진

- 부산 지역(김도읍 의원 지역구) 국제신문 접촉 ⇨ 상고법원의 장점을 소개하는 사내 또는 전문가 칼럼' 추진

■ 6기타 아이템

- ▶ 12월 발의 ~ 6월 임시회 논의 종합 기사
- ▶ 지상 좌담회, 논설위원 칼럼 등
- ▶ 상고법원 설치 후 사건 분류 및 재판 진행 시뮬레이션
- ▶ 제3자 의견서 제출 제도 이슈화
- ▶ 대법원장님 취임 4주년 기념 관훈 토론회 등
- ▶ 대법관 1인 증원 시 비용 : 상고법원 판사 1인 증원 시 비용
- ▶ 상고법원 도입 이후 하급심 판사의 경력 변화 거의 없음
- ▶ 일본, 독일 등 상고허가제 실시 국가에서 당사자 및 변호사의 상고심 재판 기회에 대한 기대감(상고심 기회의 불충분 보장에 대한 불만)

2) 언론사 효과적 활용

■ 법조출입기자설명회 개최 ⇨ 전체 기자단과의 소통 및 정보 공유

- 법조출입기자단 대상 질의, 응답을 통해 상고법원에 대한 이해 심층화
- 일부 언론사 기자단과의 물밑 접촉 등을 통해 기사거리 제공한다는 불만 등 누그러뜨림
- 다만, 대안 구체화 및 사실심 충실화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실시

■ 주요 메이저 언론과의 호혜적 관계 유지

- 조선, 동아일보의 우호적 분위기 기반으로 반향 불러일으킬 후속 기사 게재 추진 ⇨ 관심 가질만한 새로운 홍보 소재 및 방법 제안
- 예컨대, 조선일보 주도 대국민설문조사, 특집 좌담회 등
- 메이저 언론 중 상대적으로 소외감 느끼는 중앙일보에 대한 유화책



고안

- 상고법원 도입이 가져 올 긍정적 변화 시뮬레이션, 객관적 수치화된 기사 아이템 등 제시
- 메이저 언론의 지속적인 긍정적 기사로, '국민 다수가 원하는 상고법원' 이미지 구축

■ 중소 언론의 찬성 입장 합류 및 일탈적 반대 기사 방지

- 메이저 언론을 견제하면서도 그 영향력에 대한 학습 효과 인지하고 있는 중소 언론의 성향 이용 ⇨ 상고법원 찬성이 대세라는 분위기 형성
- 상대적 박탈감, 주목받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돌출적 반대 기사 억제 필요

■ 진보 언론의 악의적 반대 공론화 시도 억지

- 민변 등 외부세력과 상충부 사이의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 교감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사화 분위기 사전 감지, 대응 기사를 통한 조기 진화 등 즉응 태세 확립 ⇨ 공보관실과 법조출입기자단간 상시 유대관계 공고화 등 필요

라. 방송을 통한 홍보방안

1) 라디오

■ 시사 프로그램 종류

- 아침프로
 - MBC 신○○의 시선집중(매일 아침 7시~9시)
 - KBS 안녕하세요 홍○○입니다(매일 아침 06:25~06:56 / 07:15~07:55)
 - CBS 박○○의 뉴스쇼(월~금 07:30~09:00 / 토 07:15~09:00)



■ TBS 고○○의 열린 아침(매일 아침 7시~9시)

● 저녁프로

■ CBS 시사자키 정○○입니다(월~토 18:00~20:00) : 집중 인터뷰(15~30분)

■ KBS 공감토론(노○○ 교수, 월~금 19:20~20:56) : 3~4명 패널 초대

■ 방송 목표

● 월 1회 라디오 방송 노출 목표

● 시사쟁점에 대한 집중 보도 + 인터뷰 형식 + 토론 형식 ⇨ 모두 추진

● 적절한 인터뷰 대상자 섭외 필요

■ [TBS 고○○] 서울변회 회장 추진 중

2) 지상파

■ 프로그램 종류

● ① 메인 뉴스 속 심층보도

■ MBC 뉴스플러스 형식, 뉴스 속 심층보도 코너 섭외

● ② 뉴스 스튜디오 대담

■ KBS 밤 11시 뉴스라인 - 이슈&토크 : 전문가 설명과 분석(5-6분)

■ SBS 밤 12시 35분 나이트라인 - 배○○의 0시의 인터뷰 : 전문가 초대 인터뷰(3-4분)

● ③ 심층보도

■ KBS 취재파일 K(금 22:50) / MBC 시사매거진 2580(화 22:00)

● ④ 토론

■ MBC 100분 토론(화 24:20-01:40) / KBS 생방송 심야토론(금 23:40-01:00)

● ⑤ 좌담



■ KBS 시사진단 / KBS 일요진단 /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 **방송 목표**

- ①은 7-8월, ②는 10월경 집중 추진
- ③, ④, ⑤는 각 프로그램 장, 단점 검토 필요 ⇨ 방송국별 1개씩 9-10월경 추진

3) 종편

■ **JTBC, 채널A, TV조선 중심**

- JTBC 뉴스룸, 채널A 쾌도난마, TV 조선 장○○의 시사탱크, 시사토크 판 등 주요 시사 프로그램 보도 추진
- 방송국 섭외 + 주요 출연진에 대한 설득 병행 필요

성명	경력 등	주요 출연 채널	비고
김○○	변호사	TV 조선, JTBC, 채널 A, YTN, MBN 등	
여○○	변호사	TV 조선, JTBC, 채널 A, YTN, MBN 등	
정○○	변호사	TV 조선, JTBC, YTN, MBN 등	
양○○	변호사	TV 조선, JTBC, MBN 등	여성
백○○	변호사	TV 조선, YTN, MBN 등	
장○○	변호사, 참여연대	JTBC, MBN 등	
양○○	변호사	YTN, MBN 등	
손○○	변호사, 진보성향	TV 조선, 채널A, YTN	
김○○	변호사, 검찰출신	JTBC, YTN, MBN 등	
박○○	변호사	채널 A, YTN, MBN 등	
최○○	변호사, 대한변협 대변인	TV 조선, YTN, MBN 등	
그 외 강○○, 전○○, 강○○ 변호사 등			

마. 학술지, 토론회 등

1) 논문 발간

- **경제적 효과(허○○ 교수)**
- **헌법 쟁점 정책연구용역(김○○ 교수)**



- ▣ 상고법원안 설명 및 대안 소개(강○○ 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

2) 세미나 등

- ▣ 공동 학술 세미나(민소법-형사법-공법) 또는 학회별 토론회

- 주제 : “상고법원 + 하급심 강화”
- 형식 : 법사위 위원장 주최 정책토론회 형식 고려

- ▣ 사실심 충실화에 대한 정책토론회

- 학술세미나와 차별화 ➡ 실무가 중심
- 전해철 의원실 주최 고려

- ▣ 사실심 학술 세미나

- 정책연구원 or 법원 커뮤니티 + 외부 학회 or 대학연구소

바. 뉴미디어 홍보 방안

- ▣ 웹툰, 유니버스식 만화책 제작·유포

- [홍보 필요성] ① 웹툰이나 만화책은 어렵고 무거운 내용이라도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매력 있음, ② 상고법원에 대한 홍보가 국민 시각에서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으므로, 웹툰 등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 있음, ③ 또한, 웹툰은 손쉽게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를 통하여 제3자에게 이를 용이하게 전달·전파할 수 있음
- [홍보 현황] 현재 전문 웹툰 작가(김○○)와의 협업을 통해 웹툰 1회차 제작 완료하여, 6월 말에 대법원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상태 ⇨ 알기 쉽고 흥미로운 소재 활용하여 친숙하고 편안한 전달력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른 홍보 콘텐츠에 비해 높은 조회 수 기록 중
- 12회 생활툰 연재 방식으로 제작 계획 ⇨ 7월 중 각급 법원 홈페이지



지, 지하철 행선기 등에 업로드하고, 네이버 웹툰 게시판 등 인터넷 포털에도 노출시키는 방안 검토 중

- 아울러, 상고법원, 사실심층실화, 법관의 일상, 재판 관련 에피소드 등을 소재로 한 유니버스식 만화책 제작·발간 ⇨ 각급 법원 종합 민원실, 도서관 등에 비치하여 외부 방문객이나 내부 구성원들이 탐독할 수 있도록 제공

▣ 인터넷의 전파 기능을 극대화하는 바이럴(Viral) 마케팅 전략 구사

- [개념] 상품이나 광고를 본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공유 의식 유발하여 자연스럽게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홍보 마케팅 전략 ≡ 입소문 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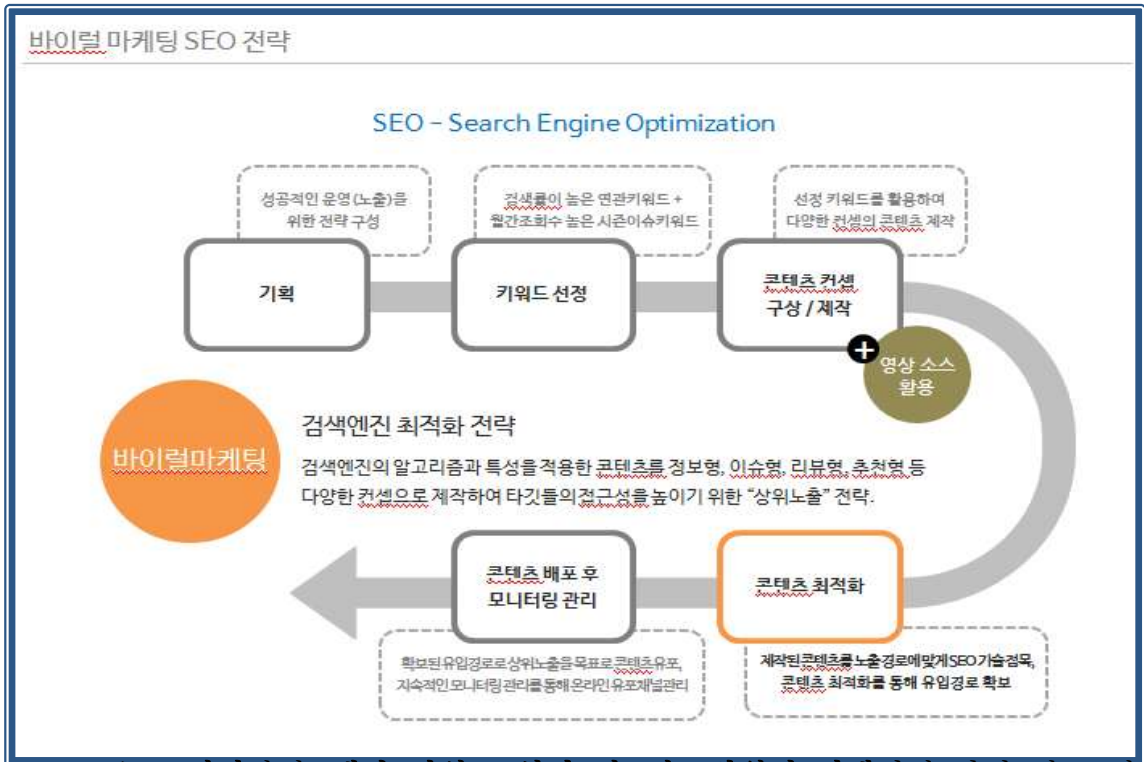
● [특징]

- ①저비용: 기존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보다 **저비용 高효과**
- ②효율적 홍보: 홍보 타겟을 세분화하여 타겟 특성에 따른 커뮤니티 선정과 맞춤형 홍보 집행
- ③높은 신뢰도: 홍보 기관이 전하는 메시지는 ‘광고’로, 지인이 전하는 메시지는 ‘정보’로 인식
- ④홍보 지속성: 홍보 집행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홍보 효과 발생

● 상고법원 관련 바이럴 마케팅 전략

- ①검색엔진 최적화 전략 ⇨ 대법원, 재판, 상고 등 검색율이 높은 연관 키워드와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소스로 활용하여 상고법원이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노출되도록 하고,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으로 노출 빈도와 강도를 유지·관리시키는 전략

- ②키워드 전략 ⇨ 연관 키워드(대법원, 재판, 상고 등), 시즌 키워드(7월의 제헌절, 9월 대법관 청문회 등), 이슈 키워드(상고제도 개선, 사실심층실화 등), 브랜드 키워드(사법부, 자유, 평등, 정의 등)를 월간 조회수 중심



으로 선정하여, 해당 키워드 입력 시, 상고법원이 검색되어 관련 정보 제시되도록 하는 전략

사. 그 외 사법부 내부 자원 활용한 대국민 홍보 방안

■ 상고법원 팸플릿 제작·유포

- 각급 법원 소개 리플릿, 전자소송 팸플릿, 국민참여재판 팸플릿 등과 유사한 양식의 상고법원 개요 설명한 2~4면 분량의 팸플릿 제작
- ①각급 법원 종합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법원 방문객들에게 상고법원 제도 안내, ②코트넷, 대법원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게재, ③대한법률구조공단, 시청, 구청 등 지역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얻어 팸플릿 비치하는 방안 추진

■ 각급 법원 종합민원실 등 영상 디스플레이를 통한 홍보

- 각급 법원(지원 포함) 종합민원실, 협의이혼대기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 디스플레이에 상고법원 홍보 동영상, 웹툰 등 탑재하여 송출

바이럴 마케팅 Keyword 전략

타킷의 관심도가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이버 검색광고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클릭키워드, 이슈키워드를 월간 조회수 중심으로 선정하여 키워드 활용

키워드	월간 조회수	월간 비용	월간 전환율
블랙시츠	78,778	77,888	10
2023년 블랙시츠	19,488	19,328	10

브랜드 키워드
브랜드 & 브랜드 관련 키워드의 인지도를 월간 조회수로 알아본다.

이슈 키워드
이슈 키워드를 활용해 SEO 전략으로 코테츠 노출 가능성을 높임

시즌 키워드
월별 시즌에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를 선정

타킷 키워드
타킷과 관련된 키워드로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조사한다.

- 소송서류 접수, 기타 민원 업무를 위해 법원 방문한 소송 이해관계인이나 민원인이 대기 중 자연스럽게 상고법원에 대한 인식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

▣ '대한민국 법원의 날' 행사와 연계한 홍보

- '대한민국 법원의 날' 홍보 자료 등에 상고법원 웹툰, 포스터 등 게재
- 9. 13. 방영 예정인 KBS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에서 상고법원 관련 문제가 나오도록 추진
-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과 새로운 심급체계의 리모델링을 구현하려는 상고법원 제도의 동반 홍보 ⇨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변화하려는 사법부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

▣ 법원 방문하는 일반인, 학생 대상 견학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 각급 법원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법원 견학 프로그램 중 '판사와의 대화' 코너에서 상고법원 제도의 취지, 장점 등 설명



-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그 숫자도 계속 증가 중 ⇨ 이해도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대법원 견학 프로그램의 경우, 행정처 심의관들이 돌아가며 ‘판사와 대화’코너 진행하고 있음 ⇨ 홍보 효과 거두기 쉬운 **고등학생 이상 견학 프로그램에, 상고법원 업무 관련 심의관을 투입하는 방안 검토**

▣ **사법연수원의 사법교육 직무연수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 [프로그램 현황] 동하계 방학기간 중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사회과 및 생활지도업무 담당 교사 우선) 40여명 대상으로 사법부 소개, 법교육론, 재판절차 안내 등 강좌 개설
- 사법부 소개 또는 재판제도 안내 강좌에서 **상고법원의 취지, 개요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교사들의 상고법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시키는 방안 검토**
- **교사들을 홍보 매개체로 한 일선 교육기관 구성원 및 중고등학생 대상 2차 교육 및 홍보 확산 효과 기대**

▣ **각급 법원의 국민과의 소통 행사 활용**

- 각급 법원에서 실시하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국민과의 소통 행사에서 상고법원에 대한 소개, 홍보 실시**

순번	법원	사업명	시기	행사 개요	홍보 방안
1	춘천지법	춘천법원 라이딩 행사	2015. 7. 11.	법원 가족, 법조출입기자 참여하는 동해안 자전거 라이딩 행사	통일전망대에서 상고법원 플래카드 게시, 상고법원 기원 이벤트 개최
2	서울고법	농촌법률학교	2015. 7.-12.	법관이 농촌지역 방문하여 지역주민에게 법률강의 실시	상고법원 제도 강의 내용에 포함
3	대전고법	대전시립교향악단 초청음악회	2015. 9. 10.	다문화 가정, 장애인, 보육원 아동 등 초청 음악회 행사	행사 도입부에, 상고법원 홍보 동영상 등 상영



4	대구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2015. 12.	일반 시민과 소외 계층 초청하여 음악회 개최	"
5	서울남부지법	야구 데이	2015. 8.	법원가족이 지역주민들과 프로야구 관람	야구장 전광판에 상고법원 동영상 등 송출
6	대구지법	UCC 공모전	2015. 7.-9.	학교폭력, 신종범죄 대책 등에 관한 UCC 공모 및 시상	공모 주제에 상고법원 포함
		EBS 리틀소시움 대한민국 법원의 날 행사	2015. 9.	지역 어린이 직업체험 시설인 EBS 리틀소시움 법원체험관에 대한 지원 및 무료 초청 행사	법원체험관 코너에 상고법원 안내 부분 설치
7	광주지법	토크콘서트	2015. 9.-11.	사회 각계각층을 초청하여 바람직한 사법부의 모습 등에 관한 토크 콘서트 실시	토크 주제로 상고법원 포함시켜 공론화
8	전주지법	법조삼성 토크 콘서트	2015. 9.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하여 KBS와 공동으로 법조삼성 토크 콘서트 프로그램 제작 방송	"
9	창원지법	지역방송국(KNN)과의 공동캠페인	2015. 9.	일반인이 관심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원이 설명하고 해결책 제시하는 영상물 제작, 송출	상고법원 관련 내용 추가

3. 상고법원에 대한 사법부 내부 홍보 방안

홍보RESTART 내부소통 부분

2015. 7.

홍보restart팀

4. 검토 배경

- 최근 상고법원에 관한 ①내부소통 노력 및 ②주요 언론의 일련의 우호적 보도로 법원 내부에서 상고법원 법률안 통과에 대한 기대 심리 확산·상승기류
- 연초 상당수 일선법관들의 무관심 내지 비관적 전망을 적극적 관심



과 낙관적 분위기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둬

- 그러나 ①현재 입법환경상 법률안 9월 정기회 이전에는 통과 가능성 희박하고, ②7월 들어 일부 언론이 상고법원 도입 시도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기도 함 ⇨ 모처럼 조성된 법원 내부의 기대감이 **실망감이나 부정적 분위기로 악화될 우려** 차단필요

- 법원 내부의 일부 부정적 분위기가 대외적으로도 입법 추진동력을 약화시켰던 연초의 상황으로 회귀하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함

☑ 연초 어느 법사위원의 뼈아픈 발언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모 부장판사가 말하기를, 모든 판사들이 상고법원 설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판사들은 아예 그런 정책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

- 내부소통 현황 등 재점검을 통한 소통 지속강화 필요

- 그간의 내부소통 방안 및 성과 등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반기 입법추진 기간 내내 법원 내부의 결속과 지지를 강화·지속할 방안 검토
- 對국회·언론 전략과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반기 홍보 그랜드 플랜의 일환으로 전략 수립할 필요

5. 내부 인식 현황 및 기존 소통 방안 점검

가. 점검 필요성 및 방법론

- 내부 인식 현황 점검 및 성과 분석 ⇨ 하반기 내부소통 방안의 방향 설정

- 냉정한 인식 현황 점검을 바탕으로 법원 내부의 이해 고취 및 결속력 강화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가시적 방안 모색 필요
- 피상적 내부 소통 및 홍보 이상의, 상고법원에 대한 심층 소개, 법관 개개인의 관심 사항에 대한 직접적·구체적 설명, 반대 입장에



대한 설득 논리 등 구축하여 전파하는 방안 필요

■ 구체적 점검 방법 및 성과 분석 방향

- ①다층화, 다각화된 의견 수렴 방안을 통해 법원 구성원의 상고법원 관련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②그간 시행되어 온 코트넷 상고법원 배너 게시, 각급 법원 법관 워크샵 등 기존 내부 소통 방안에 대하여 성과 분석
- 인식 현황 파악 방법 ⇨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을 중점 대상으로 함
 - ❖ ①법관 전용 익명 인터넷 게시판 ⇨ 진솔한 목소리 등 정확한 여론 수렴
 - ❖ ②기획법관 등을 통한 현황 및 법관 여론 취합 ⇨ 폭넓은 현황 및 기수·경력 등 고려한 분석가능한 현황 파악 + 질의 사항 등 취합
 - ❖ ③행정처 심의관 등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수집 ⇨ 문제의식에 기반한 현황 파악
- 성과 분석 방법
 - ❖ 기존 소통 방안에 대한 법관들의 평가 ⇨ ①몰입도를 높이는 긍정적 요소 및 ②반발감을 초래하는 부정적 요소 추출
 - ❖ 내부 소통의 [1단계 목표]인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제공 여부 및 [2단계 목표]인 공감대 형성과 심정적 결속 강화 목표성취 여부 및 기여도 분석

나. 내부 인식 현황 점검

■ 전반적 인식 현황 개관

- 상반기에 비하여 관심도와 정보 수준 향상
 - ❖ ① 주요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 + ② 법원장, 수석부장 등이 티타임, 만찬, 판사회의, 법관 워크샵 등 다양한 자리에서 상고법원 정보 제공
 - ❖ ⇨ 관심도의 발현으로 코트넷 상고법원 게시판 중 주요 언론보도 정리 게시물의 조회수가 1,849회, 주요 방송보도 정리 게시물이 1,359회, 상고



법원 관련 **법안심사 일정 안내** 게시물이 1,543회, **공청회 자료집** 게시물이 **820회**에 달함(중복 제외한 순 조회인원수임. 조회수에 일반직이 포함되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수치임)

■ 다만 여전히 **일부 기획법관 조차 ‘솔직히 판사들이 별 관심 없고, 통과 가능성에는 더욱 회의적이다’** 라고 하고 있음 ⇨ 관심도와 지지도가 다수의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님

● 법관들의 관심은 대부분 **인사제도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표명되고 있음 ⇨ 심급제도, 사실심 충실화와의 관계, 사법부 위상 강화 등의 관점에 대하여는 언급 많지 않음

● 상고법원 도입의 **불가피성**에 대하여는 공감대 확산

■ 무관심하던 판사들의 경우 불가피한 제도라는 점에는 동의하게 됨 ⇨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법관도 생김

■ 처음부터 반대의견을 가졌던 판사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설득되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입장이나, 다만 반대 목소리를 표출하지는 않는 분위기 형성

● 직급별·계층별 관심도 **편차 여전히 큼**

■ 부장판사 이상 및 대법원 또는 상고법원 **연구관 선발 대상 기수 판사들**의 상당한 관심도 vs 그 이하, 특히 배석판사들의 낮은 관심도

● 주로 제기되는 반대 의견

▶ 판사들 의견수렴 절차 없이 행정처에서 다 정해놓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 하였다

▶ 상고사건이 많고, 상고심 심리부담이 큰 것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사실인정에 개입하였기 때문**인데, 상고법원 설치되면 상고심 강화한다면서 우수한 자원을 상고법원 판사 또는 재판연구관으로 대거 데려갈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하급심에 대한 불신으로 상고심의 파기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법관 익명 게시판에서 크게 호응을 얻음**)

▶ 높은 분들에게만 좋고, 평판사들에게는 좋은 점 없어 보인다

▶ (특히 단독판사를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승진 대상 보직을 만들면 법관 관료화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



▣ 구체적 인식

- ▶ 기대감을 갖는 판사들 ⇨ 상반기 **6월 국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언론, 기획법관 등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 ▶ 주요 언론에서 갑자기 상고법원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보도하는데, **대법원에서 언론과 무슨 딜을 한 것이냐**
- ▶ 상고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사유로 정한 '헌법위반, 판례위반' 등은 주장하기 나름이어서 **결국 어정쩡한 4심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 ▶ 판사회의에서 법원장에게 '**사실심 충실화와 상고법원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묻기도 함
- ▶ 상고법원에서 심사할 사건과 대법원에서 심사할 사건의 **구분이 여전히 모호하고 애매하다**
- ▶ 필요성은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통과가 되겠느냐**
- ▶ 직관적으로 수긍이 되는 **대법관 증원론과 상고허가제에 비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 ▶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법원이 상고법원에 올인한다고 계속 쓰는 것이 부담스럽고, 놀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 ▶ 사법행정라인을 중심으로 **상고법원 이야기만 하는 것에 솔직히 반감이 든다**
- ▶ 헌법재판소에 밀리지 않고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단순히 업무량 때문만이라면 이와 같이 올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차라리 법관들에게 현재 등과의 관계에서 **사법부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니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이 공감대를 얻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판사들이 법원 조직 자체에 대한 애정은 있다
- ▶ 대법원장 인사권이 집중되는 것에 비판적인 법관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렇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낼 수 있는 것 아니냐
- ▶ 법률안 발의 당시 각 법원장 및 행정처 간부들이 의원들에게 **사실상 입법청탁을 한 것으로 보여 불쾌했는데, 지금은 다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 ▶ 대법원의 **인사권, 통제권 강화, 상고법원의 우수인력 독점 등 사법부 전체로 보아 상층부의 비대화가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문이다**
- ▶ 당장 와 닿지 않는 상고심 개선보다는 변협 및 각 변회의 대립, 순회 재판 제도 도입 아이디어 등이 흥미롭다



▣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 확정 可조 ⇨ 아직까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움.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내심으로 모두 찬성한다는 취지로 단정하기 어려움**

- 현 단계에서는 적극 반대 내지 무관심 법관이 크게 감소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어 보임
- 일선 법관들이 상고법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하여는 ①법관 개개인에게 줄 장점, ②(대법원장님 개인이 아닌) 사법부 위상 강화, ③국민에이 누리게 될 장점 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심정적 결속감을 공유함은 물론, 상고법원 **좌절시 사법부 위상추락으로 이어진다는 위기감까지 공유**되어야 할 것임

다. 기존 소통 방안 평가

▣ 개관

- 각급 법원원의 사법행정라인을 중심으로 한 정보제공형 소통이 중심을 이룸 ⇨ [1단계 목표 일부 달성] + [2단계 목표 미흡]
- ❖ 티타임, 법관 워크숍, 각종 연구회 등 소통 기제는 다양하였으나, 소통 주체 및 방식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됨 ⇨ 새로운 내부 소통축으로서 허브(HUB) 법관 모색할 필요
- ❖ 일부 관심도 및 이해도 제고에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선 법관 입장에서 일부 피로도 느껴지고, 가치 공유 및 심정적 결속 강화의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함 ⇨ 정서적 교감 강화 방안 모색할 필요

6. 하반기 내부 소통 강화 방안

가. 추진 목표

▣ ① Boom-Up 상태 지속 유지

- 언론 및 외부의 상고법원 관심도가 낮아지거나 소강상태가 되더라



도 법원 구성원의 관심과 긍정적 분위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

▣ ② one voice를 넘어 적극적인 홍보대사 역할 부여

- 정보제공을 통한 이해도 제고 및 오해 불식을 바탕으로 ①상고법원이 사법부와 국민에게 줄 장점에 기초한 몰입감과 심정적 결속감은 물론 ②상고법원 좌절시 사법부의 위상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위기감까지 공유하는 방안
- 사법부가 대외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입장을 현출함은 물론, 강화된 심정적 결속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 각자가 홍보대사 역할에 나서도록 할 필요 ⇨ 행정처 독주에 대한 우려 불식은 물론 전방위적 홍보·설득 강화

▣ ③ 법원 내부 상향식 추동력 확보 및 일반직 공무원까지 공감대 확산

- 법원행정처로부터 각급 법원으로 내려가는 탑다운(Top Down) 방식의 소통을 넘어 일선 법관들의 관심과 기대가 사법행정라인과 외부로 표출될 수 있는 바텀업(Bottom Up) 형태의 소통으로 진화할 필요
- 법관은 물론 법원공무원까지 상고법원의 대세론 확산에 동참하는 방안

▣ ⇨ **입법 추동력 극대화**

나. 구체적 소통 방안

1)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설득 방향 설정

▣ **기본원칙**

- ①법관의 계층별·직급별 관심사항과 의문점을 추출하여 그에 대응



하는 **최적의 맞춤형 정보제공**

- ② **인사정책** 등 일선 법관들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중심으로 정보제공함으로써 관심 유발
- ③ 언론을 통하여 단편적으로 접한 **왜곡된 정보와 피상적인 이해로 인하여** 상고법원안에 대한 **오해가 누적된 상황** ⇨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명확한 설명** 필요
- ④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사법부 비전에 대한 **가치 공유**를 통해 **일체감과 몰입감** 부여 ⇨ **심정적 결속 강화**로 법관 개개인의 **상고법원 전도사 역할** 기대 ⇨ **입법 추동력 극대화**

▣ 계층별·직급별 관심사항 추출

▶ [고법부장 이상의 법관 그룹]

- 상고법원 신설에 따른 상고법원 판사 임명 규모, 대상 범위 및 시기 등
- 상고법원과 대법원의 관계 및 고등법원 형해화 우려
- 상고법원 도입 성부가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

▶ [지법부장 그룹]

-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따른 고법부장 공석 규모 등 인사에 미치는 영향
- 상고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4심제 우려

▶ [단독판사 그룹]

- 상고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및 대상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축소 여부
- 상고법원 설치로 (특히 도입 초기) 상고심이 사실인정에 더욱 적극 개입할 것인지 여부 및 하급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여부
- 상고법원 추진 배경 및 법관 관료화 우려

▶ [배석판사 그룹]

- 상고법원과 일선 법원의 관련성
- 사실심 충실화와 상고법원의 관련성
- 상고법원에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

▣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설명 전략①] 지법부장 이상 그룹 ⇨ **비전 공유**

- ① 상고법원 신설에 따른 대법원의 정책법원化 ⇨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 위상 강화**



- ❖ 국가의 법질서를 중국적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와 통합을 주도하여 국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명실상부한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 구축
- ❖ 법치주의 구현, 사회통합, 규범담론 등에 관한 논의의 질과 양의 모든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압도 가능
- [2] 상고법원의 충실한 권리구제기능 및 심리불속행 폐지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 국민의 만족도 제고로 사법부 전체 위상 강화
 - ❖ 법무부 등과의 관계에서도 차별화된 위상 확고히 할 수 있음
- [3] 심급체계 전반에 관한 리모델링 정책 ⇨ 사법부 장기 비전

[사실심으로서 1심] 쟁점의 조기 현출, 쟁점 중심의 충실 심리 및 실질적 증거조사
⇨ 원칙적으로 사실심리 종결

[사후심으로서 2심] 심리범위 적정화 ⇨ **장기적으로 항소법원 설립 추진**

[최종심으로서 3심]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 + 상고법원의 권리구제 기능

- [4]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 높다는 **긍정적 메시지 전달**
 - ❖ 6월 임시회에서 입법 무산으로 19대 국회 처리가 어렵다는 우려 해소 필요
-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설명 전략²⁾] **단독판사 이하 그룹** ⇨ **오해 해소를 통한 부정적 선입견 불식 및 구체적 이해관계 설명**
- [1] **도입필요성과 배경에 대한 근본적 오해 해소**
 - ❖ 대법원 사건 부담 경감을 위한 대중적 처방이 아니라 심급구조 전반을 개선하려는 장기적 비전과 최고법원으로서 정책법원 구현을 위한 청사진의 일환임
 - ❖ 수뇌부 몇 명의 의견이 아니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제도임
 - ❖ **국민을 위한 상고심 개선 방안**이고, 사법부 상층부를 위한 방안이 아님
- [2] **사실심 관여 및 관료화에 관한 우려 불식**



- ❖ 항소심의 사후심화, 상고심의 법률심화를 지향하는 사법부 장기 비전에 비추어 사실심 관여 확대 가능성 없음
- ❖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의 실질적 추천권 행사 등으로 인사권 내려놓는 방안 추진하고 있어 법관 관료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함

● [3]바람직한 재판 구현 및 법관의 자부심 고취 방안임을 안내

- ❖ 사실심 충실화 방안 등은 재판의 중심을 사실심에 두려는 정책으로서 사실심 법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메시지 표명
- ❖ 대법원의 정책법원화에 따라 퇴임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도 해소될 것임

▣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설명 전략] 직급별 인사 관심사항 안내

- 내부 설명의 기회를 통해 상고법원 판사 수, 임명방식 및 예상임기, 연구관 운영 문제 등을 안내할 필요 있음

☑ 인사 관련 직급별 관심사항

- ▶ [지법 배석판사] 장기적 관점에서 상고법원이 향후 법관으로서의 라이프 사이클에 미치게 될 영향 등
- ▶ [단독판사] 상고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전보 발령 기준 등
- ▶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법 배석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유지 여부, 현 직위에서 상고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 발령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
- ▶ [지법 부장판사] 상고법원 도입과 고등부장 전보 발령의 상관관계, 인사적체 해소 기여 여부 등
- ▶ [고법 부장판사 이상급] 상고법원 판사 임명 절차, 임명 기준 및 임기 만료 후 인사 패턴 등

- 출력물이나 파일 형태로는 배포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로 예상 인사경로 등 법관의 인사에 미치는 영향 설명 가능

2) 이해도 제고를 위한 Q&A 자료집

▣ 법원 내부용 심층 Q&A 자료집 준비

- 추출된 계층별·직급별 법관들의 관심 사항, 의문점 등 정밀 분석
⇒ 타깃별 분류화



👤 (예시 ①) 인사 발령, 보직 관점에서의 계층별·직급별 관심 사항 등

- ▶ **[지법 배석판사]** 장기적 관점에서 상고법원이 향후 법관으로서의 라이프 사이클에 미치게 될 영향 등
- ▶ **[단독판사]** 상고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전보 발령 기준, 사법부 관료화 우려 등
- ▶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법 배석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유지 여부, 현 직위에서 상고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 발령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
- ▶ **[지법 부장판사]** 상고법원 도입과 고등부장 전보 발령의 상관관계, 인사적체 해소 기여 여부 등
- ▶ **[고법 부장판사 이상급]** 상고법관 임명 절차, 임명 기준, 상고법관 임기 만료 후 인사 패턴 등

👤 (예시 ②) 상고법원 도입 취지, 제도 개요 등에 관한 의문 사항

- ▶ 인위적으로 승진 대상 보직이 늘어남에 따라 법관 관료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 ▶ 현재와의 관계에서 대법원의 최고법원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 아닌지?
- ▶ '헌법위반' 또는 '판례위반' 사유는 주장에 따라 얼마든지 성립 가능하므로, 결국 어정쩡한 4심제가 되는 것 아닌지?
- ▶ 사실심 충실화와 상고법원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와 닿지 않음
- ▶ 상고사건 적체하는 주된 이유는 대법원이 하급심의 사실인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 ▶ 대법관 증원, 상고허가제는 차치하더라도, 고법 상고부, 대법원 이원적 구성 등 상고법원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제도 개선책도 많이 있는데, 왜 상고법원 제도만을 사법부가 올인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밀어붙여야 하는가?

- 분류화된 영역별로 체계적 답변 자료 작성

▣ **Q&A 자료의 효과적 활용**

- 사법연수원 경력별 연수의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강의를 통해 소개
- 각급 법원 법원장들에게 자료집 송부 ⇨ 소속 법관들과의 티타임, 오만찬 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내용 전달
- 각급 법원 워크숍, 법관 간담회, 직급별 판사회의 등을 통해 정보



제공

- ❖ 다만,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자료를 배부하지 아니하고, 기획법관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정보 제공
-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코트넷 상고법원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안** 검토

3) 비공식 순회 간담회

■ 법원장 순회 간담회

- [개요] 일선 법원의 여론을 주도하는 **법원장과의 권역별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내부 소통 강화 계기 마련
- [목적]
 - ❖ **대내적으로**, 소속 법관을 비롯한 법원 가족들의 **상고법원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내부 결속 방안**에 대한 **쌍방향 의견수렴**
 - ❖ **대외적으로**, **지역 언론, 유관기관 또는 유력 인사**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방안** 등 논의
- [시행 형태 및 일정] 비공식적 회합 형태로 진행 + 권역별 분리시행
 - ❖ 수도권 7. 7. 시행 / 충청·호남권 7. 31. 및 영남권 8. 5. 예정

■ 각급 법원 비공식 순회 간담회

- 필요성
 - ❖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대면 간담회에서의 스킨십과 피드백을 통하여** 공감대 형성과 심정적 결속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 전국적 간담회 개최를 통해 사법부가 **one-voice**를 낼 수 있는 여건 조성
⇒ 특히 일부 지방권의 경우 **지방변호사회 등은 상고법원에 강력반대**하는 반면, 해당 지역 **법관들은 무관심한 불균형 현상** 해소할 필요
 - ❖ 다수의 침묵하는 소극적 동조자보다는 **소수라도 적극적 지지자가** 필요한 상황 ⇒ 각급 법원에서 **법관 여론의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는 법관**



들 중심으로 간담회 진행

● 지향점 설정

- 간담회 참석법관이 향후 상고법원 등과 관련한 각급 법원의 내부 소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허브(HUB) 법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①허브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정한 참석 법관의 선정, ②참석자에 대한 동기 부여 및 ③참석자의 사후 허브 활동 지원 및 점검이 매우 중요함

● 주제

- 상고법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참석 법관과 행정처에 모두 부담이 큼 ⇨ 상고법원을 중심으로 하되, 사실심 충실화, 경력법관 임용 등 주요 사법 정책 현안을 아우르는 주제로 진행할 필요

● 대상 및 주관자

- 지법부장 간담회 ⇨ 사법정책실장 등 실장급 주관
-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 간담회 ⇨ 사법정책실 심의관 등 주관
⇨ 단,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에 대하여 평심의관이 정보의 면에서 우월하다고 하더라도 ‘설득 및 내부 결속 강화’의 측면에서 동료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부장급 이상의 주관 여부에 관한 추가 검토 및 정책 결정 필요

● 구체적 형태

- 식사를 곁들여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사적인 모임과 유사하게 진행
- ① 20명 이상의 규모가 되면 강당식 설명회와 유사하게 일방향적인 강의 및 정보제공에 그칠 가능성이 큼 ⇨ 쌍방향적 소통 및 교감 불가능
- ② 참석한 일선 법관들의 입장에서 간담회로 인하여 자신이 적극적으로 상고법원 등의 이슈에 관하여 설명 내지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고 마음먹을 동기 부여가 매우 부족함 ⇨ 단순히 행사에 동원되었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음
- ③ 현재는 언론과 코트넷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기본정보는 제공된 상황임 ⇨ 단시간의 간담회를 통한 추가 정보 제공만으로 법관들의 태도



및 감정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정보제공보다 정서적 교감을 통한 동기부여가 중요함**

● 세부 일정(안)

- 7월 4째주(7. 20. ~ 24.) ⇨ ①서울동·남·북·서부지법 각 법원별 **단독 판사 1인, 배석판사 1인** **합계 8명** ②서울 소재 모든 법원(고법판사 포함)의 **지법 부장급 10명** (서울중앙 및 고등 각 2명, 나머지 법원 각 1명)
- 7월 5째주(7. 27.~31.) ⇨ **서울중앙 단독 및 배석** 각 3명, **행정·가정 단독 및 배석** 각 1명 **합계 10명**
- 8월 1째주 ⇨ ①수원·인천·의정부 법원별 각 3인(**단독판사 2인, 배석판사 1인**) ②위 각 법원별 부장판사 2~3명
- 8월 2째주 이후 매주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시행 ⇨ 2째주 춘천 및 대전 권역, 3째주 대구권역, 4째주 부산권역, 9월 1째주 광주권역

● 향후 계획

- 콘텐츠 준비 ⇨ ①**사법정책실 및 사법지원실, 인사총괄심의관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Q&A 완성본 활용** ②자료 배포 없이 현장에서 구두로 설명
- 간담회 참석자 확정 ⇨ 기초실, ①**법관 여론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 ②리더는 아니더라도 법관 내부 소통의 중심으로서 이른바 **의제 설정 기능을 할 수 있는 법관**, ③동료 법관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있는 법관**
- 평소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소통이 가능한 경우 참석시킴으로써 실질적 소통의 장 모색
- 일정 및 장소 확정, 보고

● 간담회 결과 활용

- ①간담회 결과 정리·분석 ⇨ **하반기 내부소통 및 홍보 전략에 활용**
- ②**허브 법관들의 향후 활동 지원** ⇨ ①지속적인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소속감 및 책임감 부여 ②**상고법원 논의에 관하여** 각급 법원 기획법관과 상호보완작용



❖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사후 지원 및 점검 철저

4) 각급 법원 소식지 및 법원사람들 등의 매체 활용

▣ 1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매체를 활용한 홍보

▣ 코트넷을 통한 정보제공보다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장점

❖ 코트넷으로는 하기 어려운 ‘상고법원 경품 퀴즈’ 등의 아이템도 활용 가능 ⇨ 상고법원, 사실심 충실화, 소수자보호 등을 주제로 8월호부터 실시 예정

▣ 심도 있는 연재기획도 가능

5) 그 밖의 쉰법원적 홍보·소통 방안

▣ 가용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야 하는 상황임

● 그 중 내부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 모색

☑ 참고사례 ⇨ 일본 2009년 재판원제도(배심원 유사) 도입시 쉰법원적 홍보

▶ ‘재판원의 여신’이라는 홍보학습만화 발간

▶ 유명 배우 출연하는 홍보드라마 ‘해매는 벚꽃’ 후지TV 등 방송 및 홈페이지 게시

▶ 홍보노래는 물론 TV CM 지속 노출

▶ 재판원 제도 관련 홍보용 오락게임 발매 등 전방위 홍보

▣ 내부용 상고법원 해설 동영상 속편 제작

❖ 법안 발의 직전 코트넷에 게시한 ‘핵심정리 상고법원’ 동영상의 속편 제작 ⇨ 해설자는 김○○, 노○○ 판사 가운데 선정

❖ 당시 동영상에 대한 반응 긍정적이었음

❖ 법안 발의 이후 상고법원의 경제적 효용 등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제작

▣ 전국 법관 토론회 개최 방안

● 사법연수원이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또는 희망 법관이 참여하는 상고법원 관련 토론회 개최



- 일선 법관의 관심도 및 상고법원 논의·도입에 관한 절차적 정당성 강화
 - 특히 우리법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반대 법관들이 세 결집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전국 법관 토론회를 통해 상고법원의 정당성을 확인받는 절차 요건할 것임
- 코트넷 상고법원 게시판 효율적 활용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관 상당수가 위 게시판 방문하고 있음
 - 상고법원 웹툰 등 對국민 홍보용으로 만든 홍보물을 모르는 법관 다수 ⇨ 위 게시판에 게시하여 법원 구성원들부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그 밖의 다양한 홍보물 적극 게시
- 경력별 법관 연수(9~10월 예정) 활용
 - 의견 수렴 및 설득의 계기로 적극 활용
 - 사실심 충실화 방안은 사실심 법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과 상고법원안 연내 통과에 관한 긍정적 메시지 전달 필요
- 법원에서 생성되는 문건에 상고법원 로고 자동 표시 방안
 - 문서에 로고 생성 ⇨ 상고법원 접촉 기회 확대를 통한 친밀도 증대
 - 법원의 안내문, 공문 등에 현행 대법원 로고 대신 상고법원 로고 자동 생성
 - 외부는 물론 내부 구성원에게도 효과 있음
 - 상고법원 노출 및 접촉기회 극대화를 위한 소법원적 홍보 방안의 일환
 - 단 법원이 지나치게 상고법원에 얽매이는 인상을 줄 우려 있고, 홍보 문구를 법원 생성 문건에 모두 부착함은 법원의 권위에도 영향 줄 수 있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
- [소법원적 홍보시 유의사항] 공감대 결여된 채 같은 정보에 단순 반복 노출되는 것은 구성원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음



다. 일부 반대 법관과의 소통 및 대응 방안

1) 상고법원안에 대한 내부 반대 움직임 포착

- 그간 상고법원 추진에 대하여 관망세를 취하던 일부 법관들이 최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면화·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짐
- [반대이유] ①실질적으로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CJ의 인사권 등 **CJ 권한 강화에 대한 반감** + ②**명분상으로** 승진보직 신설 등으로 인한 **사법부 관료화 심화 우려**일 것으로 추정됨
- [핵심그룹]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연구회 탈퇴 후에도 교류지속하면서 논의의 주축이 되고 있음 ⇨ 특히 서울고등 김○○(15기) 부장판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표면화 배경] ①최근 주요 (보수)언론의 일련의 우호적 보도 및 ②야당 소속 반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 약화 등으로 입법환경상 긍정적 징표 ⇨ 상고법원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였을 것임

☑ 우리법연구회 2015. 5. 정기세미나

- ▶ 매월 열리는 정기세미나에서 상고법원을 주제로 다룸 ⇨ 국회 법사위 2015. 4. 상고법원 공청회 자료집에 수록된 논문 6개를 참석자가 소개한 후 전체 토론
- ▶ 25기 이하 지방법원 부장판사 4명, 31~34기 평판사 8명 총 12명 참석
- ▶ 견해가 11 대 1로 갈린 것으로만 알려짐

2) 선제적 대응 방안 검토 필요성

-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외부로 표출될 경우 ⇨ 입법 추진에 중대한 장애
- ①외부 반대세력 상대 설득·여론전에 충력을 다해 왔음에도 **상당한 반대세력 엄존함** ⇨ 내부에서까지 반대 목소리 표출될 경우 ①내부 구성원의 큰 동요뿐 아니라 ②**외부 반대세력에 대한 설득이 불가한 상황**이 될



수 있음

- ❖ ②특히 반대 법관들이 세 결집을 통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거나 단체행동을 할 경우 치명타가 될 수 있음 ⇨ 현재 논의 주도 법관들은 **단체행동에 나서본 경험이 있거나 성향상 단체행동을 주저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음

☑ 단체행동 가시화 관련 유의할 일정

- ▶ 2015. 7. 23. 故 한○○ 부장판사의 10주기 행사가 열릴 예정 ⇨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다수 결집할 것으로 예상됨
- ▶ 김 부장판사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할 경우 위 행사를 통하여 동조세력 결집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 ▶ 구체적 반대 의견 표명으로 이어질 경우 상고법원 추진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음

● 세 결집 자체를 방지할 필요성

- ❖ ①반대세력이 결집된 이후에는 설득 등을 통하여 일응 **무마된 경우에도 향후 다시 문제될 가능성** 높음
- ❖ ②외부적 의사 표출 여부와 관계없이 **상고법원 추진 및 정상적인 사법행정 시행에 불안요소가 됨**
 - ※ 노조 대응전략, 인사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서도 상고법원 추진에 불안요소가 될 우려로 인해 각 제도의 검토, 시행과정에 부담이 되고 있음
- ❖ ③핵심 그룹이 법관이어서 소통과 설득을 통해 조기에 오해를 해소하고 타협점을 찾을 여지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 대응할 필요성** 있음

3) 소통 및 대응 방안 검토

▣ [전제사항] 구체적인 정보 수집 필요

- 반대 법관들의 동향은 아직 첩보 수준 ⇨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①핵심세력은 물론 ②움직임의 목적과 ③세 결집 진행정도 및 고려 중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 있음
- 법관들의 자체적 움직임 여부 ⇨ **재야인사** or 야당의 반대 기류에



주된 영향을 미친 민변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파악할 필요

■ **[1] 접근방향] 강·온 접근 여부 ⇨ 유화·설득·타협 방안 바람직**

- 반대 법관들의 성향 및 핵심 그룹의 무게감에 비추어 압박으로 느껴질 경우 반발로 인한 단체행동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 있음
- 반대 법관들이 구체적인 단체행동을 목전에 두고 있고, 설득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여 압박책 고려함이 타당함
- 비판 내지 문제의식에 대하여 수용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필요

■ **[2] 접촉대상] 주변인을 통한 우회적 설득보다는 핵심 그룹 상대 직접 설득 바람직**

- 재야인사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김 부장판사 상대 직접 설득할 필요 있음
- 유력한 지인 등을 통한 우회적 설득으로 ①신중한 언행의 확률을 높이고, ②반대 활동 시기를 다소 늦추는 정도의 효과는 가능할 것이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 친밀도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파상적 접근이 필요함
- 김 부장판사의 반대 행보가 현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반감 및 소외감에 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접근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함으로써 반대의견 표출을 자제할 수 있는 심리 기제 유도할 필요 있음

■ **[3] 접촉주체]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설 필요 있음**

- ①고위 법관을 상대로 한 접촉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서는 것에 별다른 부담 없음
- ②직접 설득하지 아니할 경우 핵심 그룹 입장에서 본심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음
- 행정처 실장급 이상

■ **[4] 접촉시기] 현황 파악 즉시 시행**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제적 대응 필요하고 미룰 이유 없음

▣ [5] 설득수단 및 논리 ⇨ 추가 검토 필요

- 진솔한 접근과 의견교환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제거함
- 사법부 현안에 관한 내부 소통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대화의 장을 연 것이고, 특정 세력을 상대로 한 압박절차가 아님을 설명
- 법률안 발의 이후 수정, 보완된 내용을 중점 설명 ⇨ CJ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적극 수용하여 권한을 대폭 내려놓으려는 입장임을 소개

▣ ex)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대안 제시 등

▣ 반대 입장 외부 공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 돌출 행동 위험성 높은 법관들에 대한 선제적 설득 작업 불발로, 언론 등을 통해 반대 의견 표방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위기 대응체제가동
- ▣ 사전 분위기 감지 긴급 ⇨ 해당 법관 소속 법원장, 친분 있는 법관 등을 통한 자제 권고
- ▣ 언론사 기자 등과의 접촉을 통해, 보도 자제 또는 수위 툰다운 요청
- 보수 언론을 통해 대응 논리 유포 ⇨ 반대 입장 폄하·고립화 전략 추진
- ▣ 종래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돌출성 언행 전력 등 부각
- 후속 보도 제지로 부정적 분위기 확산 차단

7. 사실심 충실화 홍보 방안

가. 홍보 필요성

- ▣ 상고법원 법률안 국회 심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필요



- 법원 내부, 언론·국회 등 **피로감 최소화** 필요
- 입법 활동 공백기에 법원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사전 차단** 필요
- ▣ **법원 추진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상고법원 입법 추진 동력을 증대함과 동시에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
- **상고법원**이 단순히 대법원의 업무경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1심 충실화, 2심 사후심적 운용, 3심 법률심·정책심 기능의 회복이라는 이상적 심급구조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법부 정책의 큰 그림 속의 일부**임을 보여 줌으로써 상고법원 정책 추진의 진정성에 대한 이해 확보를 바탕으로 입법추진의 동력을 증대할 필요
- 상고법원 추진의 도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사실심 충실화 정책 추진 진정성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불식**시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

나. 홍보 목표(Goal) 정립

- ▣ ① **상고법원 정책 추진의 진정성에 대한 국민들과 법원 내부의 신뢰 제고**
- **최근 10여 년 동안** 법원이 국민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온 **사실심 충실화 제도 및 실무개선 노력**을 보여 주고, 최근의 사실심 충실화 논의도 그 노력의 일환이며, 더 나아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 역시 재판업무 재설계를 통한 이상적 심급구조 실현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큰 그림의 한 부분**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상고법원 입법추진 동력을 증대할 필요
- 상고심 한 심급만의 구조를 개편한다는 관점에서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틀에서 벗어나 3심급을 관통하여 일관



된 논리의 흐름을 갖고 분석하는 거시적 관점을 통해 입법 추진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 형성** ⇨ 동일 논리 반복 따른 피로감 최소화

■ ②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신뢰 제고

- 사법부가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 잘 하는 법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신뢰를 제고

■ ③ 대법원장님의 사법발전계획 확인과 이행 의지 재천명

- 2012. 3. 공표된 대법원장님의 사법발전계획이 **그 이전 대법원 정책을 승계**하는 토대 위에 **'법의 지배 확립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법정책목표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 사법제도 구현',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제시했다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최근의 상고법원 도입, 사실심 충실화 노력이 바로 이러한 기본이념과 사법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보여 줌으로써 사법발전계획 이행의 의지를 재천명

다. 홍보 타겟(Target)

■ 일반 국민 ⇨ 정책 추진의 **'일관성'** 강조

- 사법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이자 입법의 최종 권력자인 국민들의 지지 확보 필수적
- **'재판 잘 하는 법원'**을 위한 그간 법원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

■ 국회의원 ⇨ **새로운 프레임(Frame)** 제공

- 상고법원 정책 추진에 피로감을 느낄 국회의원들에게 **이상적 심급 구조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사실심 충실화 이슈를 던짐으로써 상고법원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새로운 '프레임'**



임(Frame)' 제공

▣ 법원 내부 ⇨ 정책 추진의 '진정성' 강조

- 사실심 충실화, 상고법원 정책 추진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 줌으로써 **정책 추진의 진정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내부 결속력 강화**

라. 홍보 핵심가치(Core Value)

▣ 법원 정책 추진의 **일관성, 진정성**에 대한 이해

- 법원이 국민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함

▣ 법원 정책 추진을 **실감나게** 예고

- 사실심 충실화 및 상고법원 정책의 추진으로 실제 국민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보다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관심도를 높여야 함

▣ 법원 정책에 대한 **친밀도** 향상

- 법원 정책에 대한 친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유리한 입법환경 조성 위한 우호적 여론 형성

마. 홍보 방법

1) 언론매체 기능 활용

▣ ① [안건설정] 무엇이 매체 보도 사안이 될 것인가?

- 그간 법원이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쏟아 온 노력, 최근의 사실심 충실화 개선방안을 주도적으로 꾸준히 언론 지상에 노출시킴

▣ ② [안건정의] 사안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 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정책의 추진으로 국민들이 얻게 될 이익, 사회적 효용 등 부각시키고,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서는 이상적 심급구조 실현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사실심 충실화를 바탕으로 항소심 심리방식 개선, 상고심 구조 개편이 불가피함을 강조

▣ ③ [여론정의] 언론매체가 어떻게 뉴스를 선별하고 보도하는가?

- 대법원이 '재판 잘 하는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전 심급을 통틀어 총체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 사실심 충실화,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그리는 큰 그림을 구성하는 조각들의 일부이고, 그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져야 비로소 제대로 된 재판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

2) 홍보 매체와 홍보 방법

▣ 신문 등 전통적 지면 매체 활용

- 그간 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노력, 최근의 사실심 충실화 개선방안 등에 관해 특집 기획 기사 게재
- 개별 개선방안에 관해 관련 전문가의 우호적인 기고문 게재 등

▣ 퍼블리시티 스텐트(Publicity Stunt) 활용

- 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 도입,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개선 등 사실심 충실화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하여, 언론의 관심 유인

바. 홍보 일정 ⇨ 2015. 7. ~ 10.

- ▣ 상고법원 입법 활동 공백기를 채우고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홍보
- ▣ 상고법원 입법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홍보전략 최적화

사. 홍보 콘텐츠



1) 개요

- 최근 약 10년 동안 사법부가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소개하고, **그간의 노력과 최근의 개선 노력이 같은 지향점을 향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었음을 부각**
- **민사, 형사, 가사 분야별로 사실심 충실화 추진성과와 최근의 개선 노력을 스토리텔링으로 전달**

2) 예시(민사)

■ 전체적인 흐름

- 신민사사건 관리모델의 도입(최○○ 대법원장님) ⇨ 구술심리 강화(이용훈 대법원장님) ⇨ **1심 집중(양승태 대법원장님)**
- 시기를 관통하는 공통 이념 : **“사실심 충실화를 통한 국민의 권리 보장”**

■ 상세 설명

- 사실심 충실화의 이념적 근거(2012. 3. **사법발전계획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 참조)
 - ❖ 모든 국민은 **법의 지배**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법의 지배는 **공정한 재판에 대판 국민의 믿음** 속에 뿌리 내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 꽃 피울 수 있음
 - ❖ 결국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는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잘 함으로써 보장되고, **‘재판을 잘 한다는 것’**은 ‘사실심 재판의 충실화’에서 출발하여 ‘**법률심 재판의 정책 기능 강화**’에 이르기까지 **각 심급의 재판이 그 역할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
- 사실심 충실화의 지향점
 - ❖ 재판의 본질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분쟁의 공정한 해결 ⇨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 재판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판수요자인 국민들로부터 재판이 공정하고 효율적이라는 신뢰를 받아야 하고, 재판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재판의 결론과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국민을 위한 합리적 사법제도 구현”,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기여하는 법원”** 구현을 통한 국민의 신뢰 확보

● 사실심 충실화의 구체적 목표

- ① 재판 결론에 대한 신뢰는 객관적으로 실체에 부합하는 결론 도출을 해 낼 수 있는 재판역량의 확보와 연결됨
- ② 재판 과정에 대한 신뢰는 주관적으로 당사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심리방식의 운영과 연결됨
- ③ 재판 결론 및 과정에 대한 신뢰 형성의 근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소송절차 관련 법령 정비의 튼튼한 토대 위에 서야 함 ⇨ 합리적인 사법제도 기본 인프라 구축

- ① **훌륭한 재판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법관의 역량 강화, ②심리여건의 개선, ③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판역량 최대화, ④효율적인 사건 관리, ⑤법원의 전문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법관의 역량 강화

- 경험 많고 경륜 있는 법관의 사실심 집중 배치
- 2018년부터 1심 전체 단독재판부의 50% 이상 부장판사 배치
- 소액, 중액사건 전담법관 임용 확대

▶심리여건의 개선

- 법관 증원을 통한 법관 1인당 사건부담 경감
- 민사 사물관할 조정에 따른 재판부 증설 통한 재판부 1개당 사건부담 경감
- 비법관 ADR 활성화
- 조기조정 활성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판 역량 최대화

- 참여관 역할 확대를 통한 법관 역량의 분쟁성 사건 심리 집중
- 사법보좌관에 의한 이행권고결정 도입
- 공시독촉제도 도입
- ▶효율적인 사건 관리
 - 집중심리 ➡ 신모델 ➡ 법정 중심 심리
- ▶법원의 전문성 확보
 -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 감정절차의 개선 노력
 - 특성화 법원 제도 도입 검토
 -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 검토
 - 민·형사법관의 분리 및 전문화

- ② 만족감을 주는 심리방식 운영을 위해서는 ①당사자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②당사자와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③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④투명하며, ⑤편리해야 함

- ▶당사자 참여기회 확대
 - 구술심리 강화
 - 조기변론기일 지정
 - 시차제 기일 지정
 - 당사자 변론종결 전 최종진술 제도 도입
 - 당사자본인신문 활성화
- ▶당사자와의 소통 강화
 - 법정 언행 컨설팅
- ▶예측가능한 재판 ➡ 법관의 재량 기준 공개
 - 증거채부 기준 공표
 - 위자료 기준 공표
 - 과태료 기준 공개
 - 양육비 기준 공개
- ▶절차의 투명성 제고
 - 증인신문절차 등에 대한 법정녹음에 의한 변론기록방안 시행
 - 민사판결서 공개
- ▶당사자의 편의성 증진



-전자소송의 확대

- ③ 합리적인 소송절차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분야

- ▶ 영상전송에 의한 증인 등 신문방식 도입
- ▶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개선
- ▶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 도입
- ▶ 당사자의 소송상 진술방식 개선
- ▶ 감정절차의 개선
- ▶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현실화
- ▶ 간접강제금 제도 정비 및 기준 마련

- 합리적인 사법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실심 충실화 정책의 자리매김** : 재판의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

■ 재판 불복절차와 심급제도를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이 효율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당사자가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당사자와 법원의 자원을 최소화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

■ 이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이상적인 심급구조 실현 노력**으로 연결됨. 피라미드형의 이상적 심급구조 실현은 그 밑바탕을 이루는 사실심이 튼튼히 받쳐 주어야 비로소 가능함. 결국 사실심 충실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의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임

■ **심급별 재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 역할에 맞게 실무를 운영**하여 심급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 분쟁이 각 특성에 맞게 적절한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시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지연의 정도를 한 심급만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심급을 통틀어 분쟁이 실질적으로 종결되는 데**



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파악할 필요

[구체적인 실천 목표]

▶ 1심 집중

- ① 법정 중심의 심리, ② 충분한 쟁점심리, ③ 폭넓은 증거조사, ④ 절차 협의의 강화

▶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 상고심 구조의 재편

▣ 사실심 충실화 개념도 : 별지 표 참조

아. 홍보 계획(안)

1) 세부 계획(안)

▣ 법률신문 특집 기획 기사

● 사실심 충실화 특집 기획기사 2회 연재

- ❖ 최근 10여 년 동안 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노력을 정리하고 최근의 사실심 충실화 개선노력이 그간의 노력과 지향점을 같이 하는 일관된 정책 추진임을 보여 줌
- ❖ **필자** : 법률신문 기자(법원행정처에서 기사 자료 제공)
- ❖ **기대효과** : 법조계 전체의 사실심 충실화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정책 추진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
- ❖ **시기** : 2015. 7. 하순 ~ 8. 초순

▣ 중앙 일간지 기고문 게재

● 사실심 충실화 논의의 이념적 근거에 관한 기고

- ❖ 대법원장님의 사법이념인 ‘법의 지배 확립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실현과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사실심 충실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기고문
- ❖ **필자** : 명망 있는 헌법학 교수



- **기대효과** : 사실심 충실화 논의가 국민 신뢰 확보를 명분으로 즉흥적으로 제기한 이슈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제기한 도구적 주제가 아님을 보여 줌으로써 정책 추진의 진정성에 대한 이해 제고

■ **시기** : 2015. 7. 하순

●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에 관한 기고**

- **민사재판 사실심 충실화 논의의 목적이 피라미드형의 이상적인 심급 구조 실현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에 있음을 강조하는 기고문**

- **필자**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유○○ 교수(민소법 전공,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민사소송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 적극 찬성론자)

- **기대효과** : 민사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을 강조함으로써 법원이 상고심 구조 개편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심급 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상고법원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간접적으로 홍보

■ **시기** : 2015. 8. 중순

● **사실심 충실화, 상고법원 정책을 큰 그림으로 조망하는 명망가의 기고**

- **사실심 충실화 논의와 상고법원 정책 추진이 별개의 논의가 아니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각 심급의 재판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일관된 목표 아래 추진되어 온 법원의 정책임을 큰 그림으로 보여 주는 기고문**

- **필자** : 법원 정책을 조망할 수 있는 식견을 인정받는 권위 있는 법조 원로계 필자 필요

- **기대효과** : 법원의 최근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임을 큰 그림으로 보여 줌으로써 상고법원 추진을 대법원의 편의 내지 권위 유지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폄훼하는 반대 여론을 잠재움



- ❖ 시기 : 2015. 9. 초순(정기국회 국정감사 이전)

▣ 정책세미나 개최

● 국회의원 주최 정책세미나 개최

- ❖ 주제 후보 : 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의 도입,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개선
- ❖ 주최 국회의원 : 전해철 의원(또는 김진태, 김도읍, 이한성 의원)
- ❖ 기대효과 : 언론의 관심 집중 유도 및 상고법원 반대 의원과의 협력 관계 형성

- ❖ 시기 : 2015. 8. 하순

▣ 유관기관 합동 심포지엄 등 개최

●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현실화 공동 심포지엄 개최

- ❖ 주최 : 법원행정처, 법률신문, 대한변협 공동개최
- ❖ 기대효과 : 대한변협도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현실화에는 찬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간 대립관계로 비쳐진 대한변협과 의견을 같이 하는 주제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언론에 우호적인 분위기 전달. 법률신문을 개최자에 추가함으로써 두 기관의 중간자 역할과 홍보 극대화를 도모

- ❖ 시기 : 2015. 9. 하순

●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 공동 심포지엄 개최

- ❖ 주최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참여연대 공동개최
- ❖ 기대효과 :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전문가의 사법참여 확대에 관심을 보일만한 참여연대를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 입법 추진 동력 확보

- ❖ 시기 : 2015. 10. 초순

● 특성화법원 제도 도입 공동 심포지엄 개최

- ❖ 주최 :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공동개최



- 기대효과 : 부산지법에 해사분야 특성화법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서울 중심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부산·경남 지역 여론 전환 유도

■ 시기 : 2015. 10. 중순

■ 홍보 책자, 동영상 제작

- 상고법원 브로셔와 유사하게 그간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법원이 기울여 온 노력을 브로셔로 제작·배포하고 동영상으로 만들어 홍보
- 콘텐츠 : 별지 표 참조
- 시기 : 2015. 9. 중순(국회 국정감사 이전)

■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발간

-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구성, 활동경과, 회의자료, 건의문 등을 종합 정리한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향후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시기 : 2015. 10. 중순(발간 시기까지의 심포지엄 개최 등 추진 경과를 담은 보고서 발간)

자. 세부 계획(안) 종합 : 별지 참조

8. 향후 계획

- 상고법원, 사실심 충실화 콘텐츠와 홍보 전략의 효과적 접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상고법원 홍보 Restart팀, 뉴미디어 홍보팀 운영
- 상고법원 제도의 핵심적 내용, 그간의 사실심 충실화 노력 등을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여 우호적 분위기 정착시키고, 이를 토대로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상고법원 대세론 메이킹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실국간 아이디어 및 의견 교환 필요



⇒ 기초실, 정책실, 지원실, 공보관실 등 관련 실국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역할 분담

▣ **홍보팀 기본 전략 회의를 통한 홍보 방안 설계**

- 홍보팀 회의를 통해, 상고법원 등 홍보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
- 기존 홍보 활동에 대한 장단점 평가 및 의견 교환
- 중장기 홍보의 기본 방안 수립

▣ **홍보 Restart팀 홍보 실행계획 수립 및 보고 : 7. 15.까지**

- 1단계 홍보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홍보 전략 구체화
- 홍보 매체별 접근 및 이용 방안, 홍보 콘텐츠 등 확정

▣ **홍보 동영상, 웹툰, 포스터 등 제작, 유포**

- [동영상] 외부 전문 제작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7. 15.경까지 제작 완료 예정
- [웹툰] 유명 웹툰 작가(김○○) 섭외 ⇒ 연재 방식으로 12회 웹툰 제작하기로 협의 완료
 - 움니버스식 만화책으로 편집, 제작하는 방안 검토
- [포스터] 시안 제작 중 ⇒ 대내외 의견 수렴 후 7월 말까지 제작 완료 예정
- 신문, 방송 등 전통 매체 홍보와 병행하여, 여론의 호응 등 시너지 홍보 효과 도모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에 대한 반응과 향후 계획

2016. 4. 18.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가.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완료

▣ 진보 성향 법관 & 인지도 높은 법관 대거 포진 ⇨ 법관들의 큰 호응

- 이른바 ‘왕당파’로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① 진보 성향 법관 및 ② 법관 사회에서 인지도 높은 법관(예: 문○○ 부장판사)을 대거 위원으로 위촉 ⇨ 법관들의 반응은 매우 好意的

☑ 법관들의 반응

- ▶ “깜짝 놀랐다”, “법원행정처가 통큰 양보를 했다”, “사법행정위원회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기대가 된다” 등의 긍정적 반응
- ▶ 김○○ 춘천지방법원장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를 보고 나서 “앞으로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해 강한 요구를 하기 보다는 사법행정위원회에 협조하라고 후배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발언

▣ 핵심 그룹의 공세 선제적으로 차단

- 핵심 그룹 등 진보 성향 법관들의 호응을 얻을만한 법관들이 충분히 위촉되었음 ⇨ 핵심 그룹은 최소한 ‘위원 구성 문제’에 관한 더 이상 사법행정위원회를 폄하할 명분 없음

☑ 핵심 그룹의 호응을 얻을만한 법관들

[법원문화] 윤○○, 문○○, 김○○, 정○○, 류○○

[재판제도] 김○○, 이○○, 장○○, 유○○, 홍○○

▣ 흥행 요소 구비 ⇨ 위원회 출범 의의 고양

- 법관 사회에서 인지도 높은 법관이 위원으로 참여 ⇨ 사법행정위원회



홍행에 도움

법관 사회에서 인지도 높은 법관

▶ 문○○, 류○○ 등



-
- 이른바 진보성향 법관 상당수 포진
- 깜짝 놀랐다.
- 김○○ 춘천지방법원장 ⇨ 법원행정처가 통 큰 양보를 하였다.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
- 사법의 관료화, 권력기관화 타개책
- [진보적인 제도 + 보수적 시각]
 - 보수적 시각을 공격할 수 없으니, 진보적인 제도를 공격
-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결과 ⇨ 체제 내부화

■ 법관윤리위원회 2016. 3. 출범

- 법관들의 비위사례 ⇨ 강력한 의지를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셈
-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법관윤리위원회 ⇨ 자율(autonomy)
- 다룰 수 있는 아이템 매우 풍부
- “비공개”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따지 거는 것 차단
- 비위행위에 관한 중요 정보에 관여한다는 느낌 ⇨ 중요한 일에 참여한다는 자부심도 줄 수 있음
- 규칙상 소관범위 명시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018년 이후 출범

- 내용 불분명



● 대법원장님

■ 기대

- [명분] 위원회를 시행한 후 그 장단점을 분석
- [임기] 1년
- <1안> 내년 상반기에 두 개를 출범한다.
- <2안>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 논제가 마련된 것부터 한다.
- 사법정책기획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에 함
- <3안> 2017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 약속한 바는 없음
- 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출범하는 이유
 -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 ⇨ 법관들의 필요
 - (예) 법관들이 판결에 대한 논평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 강의로 받는 것
 - 판사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들 ⇨ 논의하기 시작하면 주제를 발굴하기에 따라 무궁무진 ⇨ 판사들과 관련된 접촉 국면이 매우 많음
 - 윤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야 함
- 사법정책기획위원회
 - [인사, 사무분담]
 - 영역이 불분명함, 주제의 모호함 ⇨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임
 - 논의의 범위를 제한 ⇨ 미래, 중장기 사법정책
 - 대법원장님의 아이디어를 구현



- 상고제도, 사실심 충실화, 인사제도
- 판사들이 싸울 위험
- 성과를 내지 못할 위험 ⇨ 대법원장님 임기
- 대법원장님이 공격받을 우려 ⇨ “상고법원”

-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

- 새로운 대법원장님

- 장기 정책 ⇨

■ 핵심그룹의 주장

- 김○○ 법원장님의 발언

- 법원장회의에서도 문제점 지적

- 一戰을 노리고 있음

- 김○○ 부장판사의 게시글

- 사법정책기획위원회는 왜 설치하지 않는지 의문 제기

- Big Mouth들이 사법정책기획위원회로 몰리지 않을 것임

■ 사법정책기획위원회

- 법원문화연구반, 재판제도연구

- 사법정책기획위원회는 주제가 지나치게 광범위 ☞ 준비가 필요

- 준비작업, 연구용역, 연구반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2015. 7.

기획조정실

I. 검토 배경

-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은 VIP의 몫 ⇨ **BH의 입법 협조 획득이 절대적**
 - 현 정국의 무게중심 BH로 완전 쏠려 있는 상황
 -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 사퇴 등 최근 정치 현안에서 BH 압승
 - ❖ 여당, 법무부·검찰 모두 중요 국가 정책에서 BH의 눈치 보며 주도적으로 자기 목소리 내지 못하고 있음
 - 상고법원안에 대한 법사위 여당 의원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어 내기 위해서는 BH의 영향력 발휘 절실
 - ❖ 특히, BH의 입김은 법무부·검찰 및 그 종속 변수인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을 움직이는 직접적·결정적 동인이 될 것
- 하지만 BH 내 **견제·반대 분위기에 큰 변화 없음**
 - 전임 김기춘 비서실장 영향에 따른 부정적 분위기 고착되어 있고, VIP 핵심 보좌진의 親검찰 구성의 틀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
 - BH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설득 방안 검토하고 있으나, 상고법원 및 사법부에 대한 기존의 인식 전환, 우려 불식에 성공하기 전에는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타개책 필요** ⇨ **적극적 협상 카드 제시하여 새로운 BH 설득 모멘텀을 확보해야 할 시점**



- 현재의 상고법원안에 대한 BH의 최대 관심 포인트 포착 ⇨ BH 설득이 가능한 수정안 제시
- 아울러, BH 최대 역점과제인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청사진 제안
- ⇨ ① 수정안 및 新정책에 대한 관심 유발, ② 사법부의 진정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BH를 상고법원 도입의 우군 세력으로 포섭할 수 있는 전략 모색

II. BH 현황 분석

1. 대외 현황

- ▣ **집권 1~2년차** ⇨ **가시적인 성과·업적을 거의 도출하지 못하였음**
 - 집권 1년차의 인사 난맥상, 집권 2년차의 세월호 사고, 비선 실세 논란 등 ⇨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
- ▣ **집권 3년차** ⇨ **불안감·절박감** 속에 가시적 성과를 쌓기 위한 **'골든 타임' 선언**
 - 올해는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에 해당함
 - ❖ 전국 단위 선거가 없음 ⇨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총선과 대선으로 인한 정치 이슈에 매몰될 수밖에 없음
 - ❖ 내년부터는 집권 4년차로서 레임덕 시작 ⇨ 올해 초 비선 실세 논란 등으로 인하여 조기 레임덕 가능성마저 제기된 바 있음
 - 뚜렷한 '집권 3년차 아젠다' 발굴·제시하기 위해 고심의 노력 ⇨ 조기 레임덕 방지를 위한 司正 아이템 채택
 - ❖ 3월경 이완구 전 총리를 앞세워 '부정부패와 전면전' 선언하며 제1차 사정 정국 조성 ⇨ But, 성완종 전 의원의 자살로 역풍 직면, 오히려 이



완구 전 총리가 국무총리직에서 낙마하고 불구속 기소됨

- 후임 국무총리로 황교안 법무부장관 임명하며, 사정 2라운드 착수 분위기 조성

👤 ①유사 이래 최초로 현직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임명, ②행정부 2인자로 공안통 검사 출신 기용 ⇨ 강력한 사정·공안 드라이브 메시지 표방

■ 두 가지 화두 ⇨ **‘경제’와 ‘통일’**

- [경제] ⇨ 각종 정치 이슈를 잠재우고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 준비를 위한 목적
- 이른바 ‘경제위기론’ ⇨ 개헌론 등 소모적인 정쟁 요소를 압살하는 한편, 레임덕의 시작 시기를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전통적 방법
- 또한 역대 정권의 성패는 임기 말의 각종 경제지표에 따라 평가됨되었고, 정권 재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

☑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 ▶ 2014. 1. 발표 ⇨ ※‘두 달 만에 급조된 계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①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②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③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

- [통일] ⇨ 총선·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 목적
- 內治에서의 실책을, 다소 추상적이고 이벤트 성격이 강한 外治, 특히 통일 분야에서 만회하려는 목적
- 특히 ‘통일대박론’이라는 프레임 선점은 진보층 공략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오히려 북한 지도층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어 긴장감 조성을 통한 보수층 결집에도 상당히 유효한 다목적 카드임

2. BH·여권 내부 현황

■ BH의 압도적 주도권 확보



- 여야 합의 산물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VIP의 거부권 행사,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등 강공 전략 구사
- 김무성·유승민 투톱 체제 출범 후, BH 영향력 벗어난 여당의 독자 행보에 대한 위기의식 발로
- VIP 집권 하반기 성공적 정국 운영을 위해, 내홍 감수하고라도 여당에 대한 친정 체제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
- 특히,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을 둘러싼 역학 관계에서 밀릴 수 없다는 친박계의 현실적 셈법도 막후에서 작용
- 결과적으로, BH 의사 모두 관철됨 ⇨ 당분간 VIP가 여권의 구심점으로 막강한 영향력 발휘 예상

■ 당청 관계 복원 노력 ⇨ 포스트 유승민 정국 설계에 주력

- 유승민 원내대표 사임 2일 만에, 장기 공석이던 정무수석에 현기환 前 의원 임명 ⇨ 소통 단절 상태인 당청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신호탄

☑ 현기환 신임 정무수석

- ▶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대회협력 본부장 등 지낸 노동계 출신 정치인
- ▶ VIP의 복심을 입을 줄 아는 측근 ⇨ 내년 총선에서 여당 공천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
- ▶ 정통 친박계이지만, 비박계와도 두루 친분이 두텁다는 평
- ▶ 김무성 대표와 '호형호제'하는 사이 ⇨ 김 대표에 대한 배려 내포

- 유승민 사태 국면에서 무난하게 중재력과 정치력 발휘한 김무성 대표에 대한 신뢰 재확인 ⇨ 김무성 체제에 최대한 협조하며 하반기 정국 이끌어가겠다는 포석
- 합의추대 방식으로 신임 원내대표에 원유철 의원, 정책위의장에 김정훈 의원 선출

☑ [인선 배경, 성향 등]

- ① 원유철, 김정훈 의원 모두 비박계이지만, 계파색 없고 친박계와도 관계 무난



- ② 원만한 성격에 당내 교분의 폭 넓어, 위기 수습용 인선으로 최적
- ③ 계파 초월한 탕평 인사 외관 창출하면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원내대표로 격상시켜 정책 일관성도 달성

❖ 다만, 신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BH가 원하는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

❖ 여당 내 실무급 인사에서는 친박계 쏠림 현상 발생

- 📌 ①원내수석부대표 ⇨ 친박계 핵심 조원진 의원, ②공천 책임지는 사무총장 ⇨ 친박계 황진하 의원

● 7. 16. VIP와 여당 지도부간 청와대 회동으로, 파열음 냈던 당청관계 복원에 착수 ⇨ 향후 당정청 회의 월 1회 정례화 추진

■ BH 내부에서는 민정수석 등 강경파 득세

● 당청관계 ‘근본주의자’들이 VIP 주변에서 지근거리 보필

❖ 여론 살피고, 대화·타협 중시하는 온건파 입지 축소

☑ 이병기 비서실장 소외론 대두

- ▶ ‘문고리 권력 3인방’ 포함, 강경파 수석들과 불화
- ▶ 당청 긴장 국면에서 중재역할 제대로 못해, VIP와 심리적 거리 멀어져
- ▶ 최근 지인들에게 “비서실장 자리를 그만두고 싶다”는 심정 토로한다는 소문

❖ 대신, VIP 심기만 살피고 충성 강조하는 강경파들 활동 반경 확대

☑ 우병우 민정수석의 입지 강화

-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2의 사정 정국 구성에 막후 영향력 행사
- ▶ 우 수석이 비서실장보다 더 자주 VIP 독대한다는 소문

3. 사법부에 대한 인식

■ 상고법원 도입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요 원인] 최종심 법관에 대한 VIP의 임명권 침해

● 대법관 전원을 VIP가 임명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역시 최종심 법관인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VIP의 인사권 행사 가능성에 주목



- 그러나 현재의 법률안에는 VIP에 대한 인사권 배려 없음 ⇨ 상고법원 도입을 최고법원 구성에 대한 VIP 관여에서 벗어나 사법부가 영향력 확대하려는 시도로 파악
- 독립된 법원을 설치하여 소송 심급 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중대 현안 관련하여, BH와 사전 조율 없이 국회의원 설득을 통해 법률안 발의한 경과에 대해서도 반감 있는 것으로 보임

▣ 사법부가 국정 운영 추진에 걸림돌 된다는 인식 상존

- 기본적으로 사법권 독립 존중 의식보다, 정치적 시각에서 사법부가 BH 정국 운영에 협조적인지에 강한 관심
 - ❖ 전임 비서실장, 민정수석의 검찰중심적 사고, 反법원 정서가 상당한 영향 미침
- 정치적 쟁점 내포된 사건 등에서 여권에 불리한 재판으로 정국 운영에 큰 방해가 되고 있다는 불만 有
 - ❖ 예컨대, 원세훈 사건 항소심 판결, 자원외교 수사 관련 김○○ 前 금감원 부원장보, 정○○ 前 포스코 부회장 영장 기각 등
- 사법부에 대한 적절한 통제 필요하다는 인식 팽배
 - ❖ 사법부에 쉽게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상고법원 등 주요 현안을 매개로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강화 방안을 줄곧 모색

III. BH 설득의 기본 방향 ⇨ [1]상고법원에 대한 우려 해소, [2]BH 중점 추진 정책 관련 아이템 제공

1. 상고법원에 대한 BH 최대 관심 사항 공략

▣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관한 VIP 인사권 보장

- 헌법이 대법관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두고 있는 취지가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BH 내에서 득세



☑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공식 발언

“VIP에게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지명권을 달라, 그러면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할 수 있다”

● BH 설득을 위해 특단의 카드 제시

- ❖ 사법부 내부적으로는 CJ의 인사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일정 부분 보호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CJ가 파격적으로 인사권을 내려놓고 대신 VIP 인사권 개입을 강화하는 방안 필요 ⇨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에 VIP 지명 위원 다수 참여하는 방안 등

■ 사법부 조직 확장 의혹 불식

- 대법원 외 독립된 상고심 법원 신설로, 사법부 예산·인원·시설 등 확대하려 한다는 의심 제거 필요
- ❖ [반박·설득 논리] ①법관 정원 내에서 운용, ②초기 별도 시설 불요, ③ 재판부 수 증가 등으로 인한 필요최소한의 예산 증액만 필요
- 상고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하고 진정성 담긴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강변
- 아울러,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등 대안 제시하여, 설득과 타협의 여백 마련

2. BH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제시

■ BH가 주도하여 정권의 성과업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상고법원안을 포함시켜 함께 추진함

-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물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함
- ❖ 단기간 내 추진을 위해서는, 명료하면서도 타 기관과의 이해관계 상충 등 장애 요소가 적은 아이템이어야 함
- ❖ 사법부 자체적인 연구·검토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함

■ BH의 관심을 유도할만한 내용이면서 사법부에 우호적인 내용으로 구성함

- 관심 유도 ⇨ 최대 현안인 경제 관련 아이템이 적당함



☑ 경제와 사법의 관계

- ▶ 한 국가의 법치주의 실현과 GDP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있음 ⇨ 이코노미스트誌에 실린 우측 그래프는 이를 나타내는 것임
- ▶ 2007년도 KDI 보고서 ⇨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의 법질서만 확보되어도 GDP가 1% 추가 성장한다'라는 분석
- ▶ 세계은행 발간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 분쟁 해결[Enforcing Contract] 부문이 주요 평가 요소 중 하나[대한민국 사법부 3년 연속 2위 차지]

IV. 구체적 설득 방안

1. 상고법원 판사 임명 절차 재설계

가. 기존의 사법부 내부 검토 방안

■ 개요

-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에 국회 및 대통령이 선출 및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시키는 방안 ⇨ 국회 2명, 대통령 1~2명, 사법부 현직 법관은 최소화

■ 한계

- ① BH 입장에서 반대할 가능성 높음
 - ❖ 9~10명의 추천위원 중 1~2명의 지명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
- ② 국회 몫의 추천위원이 포함될 경우 여야간 정치적 타협에 따라 후보자 나눠먹기 식의 추천이 이루어질 가능성
- ③ 국회에 대하여 대법관의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추천위 참여권을 인정하게 됨 ⇨ 대법관의 경우와 균형에도 맞지 아니함
 - ❖ 헌법은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에 대하여도 국회의 추천권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나. BH의 반감을 없앨 수 있는 새로운 임명절차 제시

- [개요] 당연직 3인 외 6인 ⇨ CJ와 대통령이 각 3인씩 지명



	대법관후보추천위	기존 검토안	새로운 제시안
다 면 직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선임대법관	상고법원장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비 당 면 직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대통령 지명 1명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추천 2명	
	학식, 덕망 있는 비변호사 3명	학식, 덕망 있는 비변호사 2명	학식, 덕망 있는 비변호사 3명
종합	행정 1명, 사법 3명, 재야 1명, 교수 2명 일반 3명	입법, 행정, 사법 각 2명 재야 1명, 일반 2명	행정 4명, 재야 1명, 사법 1명, 일반 3명
우 호 표	10명 중 6명으로 과반 확보 (사법 3+일반 3)	9명 중 4명으로 과반 미달 (사법 2+일반 2)	9명 중 4명으로 과반 미달 (사법 1+일반 3)

■ 1 CJ의 인사권 대폭 양보

- '(대법원장이 지명하지 아니한)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구성하는 추천위원회가 추천권 행사'한다는 것은 대외적 상징성과 설득력이 가장 큰 요소임

☑ 다른 고위공직자 후보추천위원회와의 비교 ⇨ 대법원이 파격적으로 양보한 것으로서 **진정성 있는 권한 양보**임을 부각시킬 필요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 9명의 위원 중 법무부 우호세력 5명(검찰측 인사 2 +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비변호사 일반위원 3)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 7명의 위원 중 국회 우호세력 4명(나머지 3명은 법조3륜 대표)

- CJ의 사심없는 인사권 양보'로 설득 가능성 높아질 것

■ 2 반면, 대통령의 관여 정도 획기적 강화 ⇨ BH 설득에 유리

- 대통령 지명 위원이 추천위 논의를 주도하게 되므로 **사실상 대통령에게 지명권을 부여한 것과 유사한** 효과 발생



- BH입장에서도 헌법상 CJ에게 임명권한이 있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핵심을 얻었다고 받아들일 것
- 피추천자들 중 실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도 BH와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중이 반영되도록 보장하겠다는 추가적인 전략적 스탠스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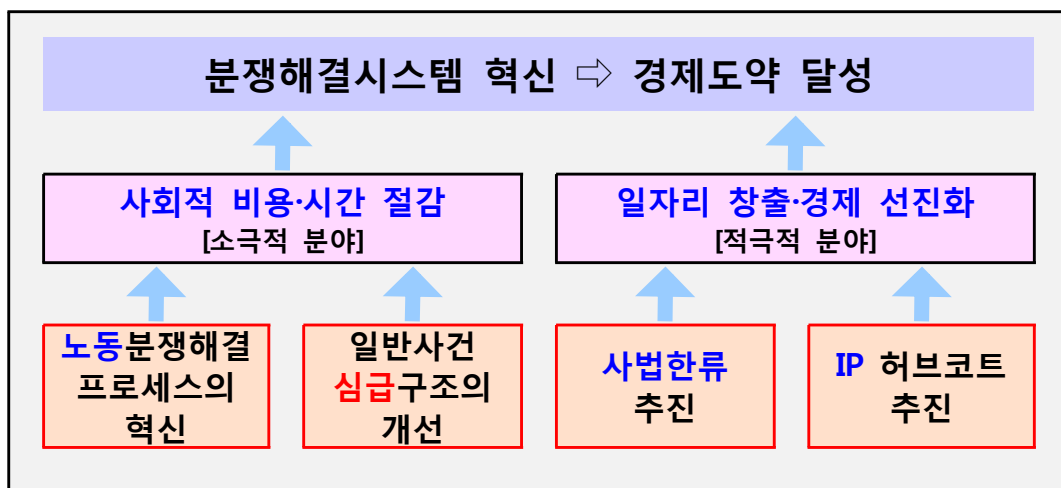
▣ ③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의 실질적 인선 기능 발휘

- 상고법원 판사 임명 대상자를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로 한정 ⇨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닌, 임명대상자를 검증·선정하는 인사심의 기구
 - ▣ [유사 사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검 감찰부장 등
- 임명대상자 추천 배수는 2배수 또는 3배수로 설정

- ☑ 한편, 국회의 권한 보장 모색 ⇨ 약식청문회에 준하는 인사검증권한 부여
 - ▶ 가칭 '국회 인사검증위원회 심사제도' 도입
 - ▶ 법사위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원칙적 서면심사방식에 의한 인사검증 실시
 - ▶ 인사검증심사경과보고서에 사실상 기속력 인정

2. BH 중점 추진 정책 아이템 제시

가. 정책 타이틀 ⇨ 가칭 '경제도약과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분쟁해결시스템 혁신'



- ▣ '경제도약'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그 선결 과제이자 우리나라의



고질적 폐해인 '사회갈등해소'를 2차 아젠다로 제시

▣ '반성적'인 '개혁(reformation)'이 아닌 '창조적'인 '혁신(innovation)'으로 네이밍

● '혁신'은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사용된 워딩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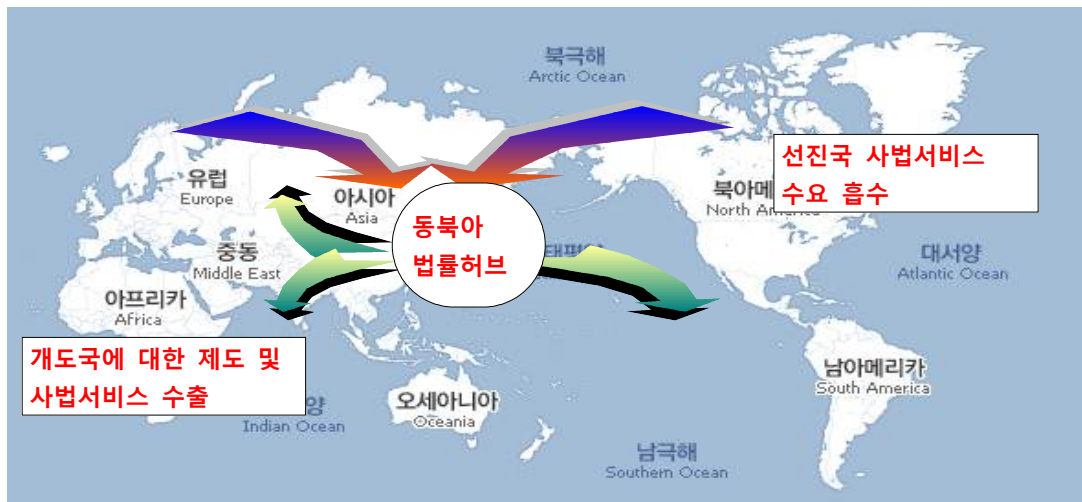
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사법한류 추진

1) 추진 배경

▣ **경제도약 및 국가경쟁력을 창출하는 사법한류 사업 추진**

- 사법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획득 ⇨ 국가 新성장모델로 설계
- 사법한류 확산에 의한 국가 신인도 상승과 Country risk 하락 효과도모 ⇨ 보다 유리한 조건의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교류 확대 기반 조성

▣ **추진 기본 방향 ⇨ 인바운드 · 아웃바운드 양방향 전략 추진**



● 인바운드 [외국 ➡ 한국] 국제상사법원 및 국제중재기구 설치 ⇨ 국제 분쟁해결지로서 위치 선점

▣ 법서비스 분야에서 막대한 부의 유출 [국내 법률시장 3조 원 vs 국내기업 해외지급 법률비용 10조 원] ⇨ 선진화 · 국제화를 통한 타개책 필요

● 아웃바운드 [한국 ➡ 외국] 개도국에 대한민국의 법제도 수출 ⇨ 법치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선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이미지 제고



▣ [장기적 목표] 동북아 법률수도로 자리매김

- 아시아 경제권의 활성화에 따른 아시아지역 법률수요 증가 ⇨ 영국·미국과 같은 확고한 선도 국가 없는 혼돈의 동북아 법률시장에서 맹주 지위 획득

2) 국제상사법원 및 국제중재기구 신설



▣ 국제자유경제구역 내 국제상사법원 신설

- 인천 송도 또는 제주도를 국제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
- ▣ [인천 송도] 자유경제지구와 연계 + 분쟁당사자들의 접근성 극대화
- ▣ [제주도] 일본, 중국의 지리적 근접성, 아시아 법률수요 고려

▣ 제주도의 對중국 입지 우월성

- ▶ 자본주의를 접한 중국 부호, 사업가들의 제주도 내 투자 급속히 증가
- ▶ 중국 최고경영자들의 경영전략회의, 제2의 생활근거지, 휴식처로서의 선호도 상승
 - 제주도의 우수한 사회·교육·문화·환경인프라에 매료
 - 특히, “공안경찰이 없는 제주도에서의 자유로운言論 개방”에 매우 만족
- ※ 제주도의 안전(Safety)·자유(Freedom)·정의(Justice)를 보다 세련되게 상품화하여 중국에 판매 ⇨ 중국의 막대한 경제력 유인

- ▣ 국제자유경제구역 내 법률시장 완전 개방 ⇨ 세금 면제, 규제 완화

- 자유경제구역 내 국제화·특화된 경제 전문법원 설립
- 외국 재판관을 법관으로 임명
- 국제상사분쟁해결의 신속·적정한 처리에 적합한 전문재판부 구성



- ❖ 상사부(Commercial Division), 파산부(Bankruptcy Division), 중재전담부(Arbitration Division), 해사부(Admiralty Division) 등

- 국제분쟁해결기구에 걸맞는 재판운영

- ❖ 공식 언어로 영어 사용, 외국 변호사 소송대리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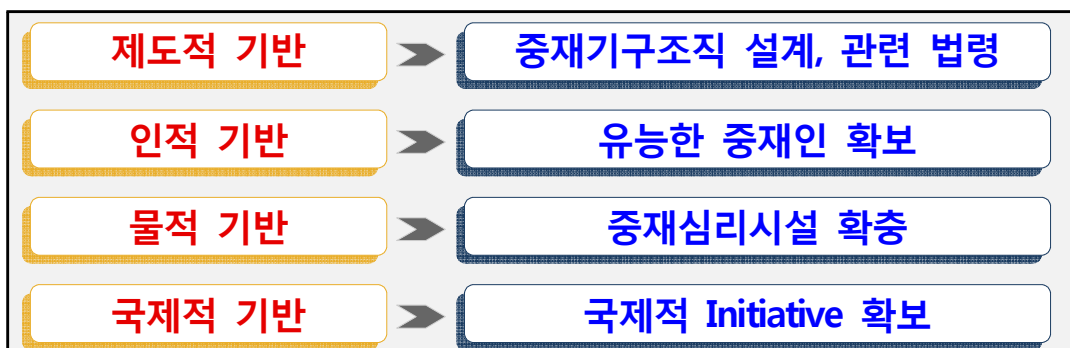
■ 국제자유경제구역 내 국제중재기구 신설

- [필요성] 국제중재사건 유치에 따른 경제적 수익창출 효과 至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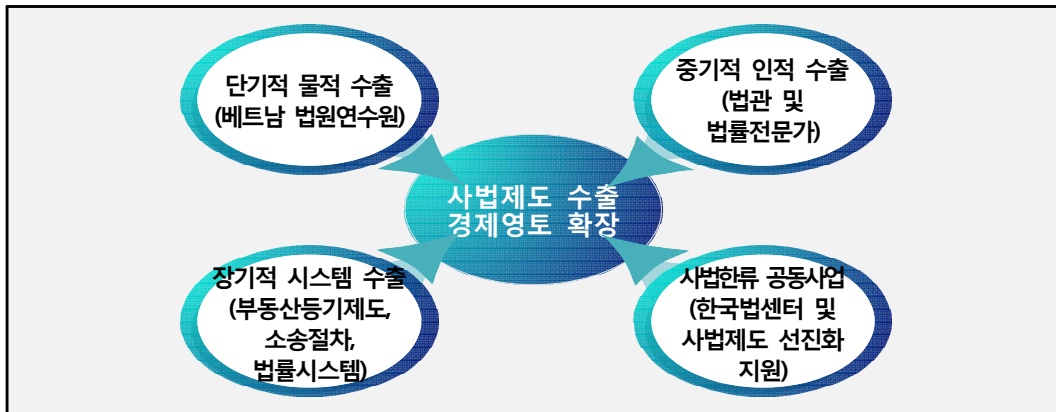
☑ 국제중재 활성화의 경제가치

- ▶ 중재사건 1건 유치 ⇨ 25억 원의 경제가치
 - 향후 5년간 매년 50건씩 유치 ⇨ 6,250억원 수익
- ▶ 2013년 한국기업 국제중재분쟁금액 약 20조원
 - 중견급 이상 기업, 해외거래 분쟁의 90% 이상 국제중재로 해결

- 정부 주도의 법원연계형 국제중재센터 설립
- 국제중재센터와 중재전담재판부 연계
 - ❖ 소송과 중재의 결합 ⇨ 집행까지 신속·공정한 one-stop 사법서비스 제공
- 인적·물적 기반 확충
 - ❖ [인적 기반] 전문성 갖춘 유능한 중재인 확보
 - ❖ [물적 기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중재심리시설 구비
- 향후 5년 이내에 아태 지역 국제중재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제중재 활성화 플랜 수립



3) 사법제도 수출



▣ [필요성] 세계 최고수준의 선진 사법제도 보유 ⇒ **개도국에 사법제도 수출**

- 상품과 건물의 수출에서 시스템과 제도의 수출로 패러다임 전환
- 법치주의 및 법제도 수출을 통해서 **법률영토 확장**
- 국내 기업 해외진출의 기반 조성 ⇨ 법의 지배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 [대상] ①아시아 개발도상국, ②남미 개발도상국, ③동유럽 기타 체제전환국

▣ 정부 주도 사법한류 공동사업 추진

- BH 주도 아래 사법부, 법무부, 법제처, 외교부(코이카) 등 유관기관 참여하여 공동사업 추진 ⇨ 다수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 도모

▣ 국제기구 등에서의 법제도 지원 프로그램 활용

- UN 등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지원 프로그램과 접목 ⇨ 사업재원 확보에 유리

▣ 장기적·종합적 시스템 이식

-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갖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



- 전자소송, 부동산등기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 출입국관리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법제도와 시스템 전수

4) 향후 추진 계획

▣ 사법부 내 기초 연구작업 착수

- 외국 성공사례에 대한 심층 벤치마킹
- 사법부 내부 연구반 또는 TFT 구성·활동
 - ▣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 사항, 인적·물적 기반 소요 등 파악

▣ BH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사법부, 법무부, 외교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추진체 구성

- 사업 추진의 동력 확보를 위해 BH가 사업의 전반적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는 전국가적 혁신 아젠다로 설정
- 구체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장단기 액션 플랜 수립

▣ 사업 착수

- 사법한류에 대한 국내외 다각도의 홍보 실시
- 액션 플랜에 따른 단계적 실행 계획 실천
 - ▣ 과감한 세제혜택, 규제완화를 표방하는 국제자유경제지구 지정
 - ▣ 특화된 국제상사법원 등에 적용되는 회사법, 증권법, 노동법, 파산법 등 국제기준 법률 제정
 - ▣ 유능한 외국 재판관, 중재전담법관 등 임용

다. 노동분쟁해결 프로세스의 혁신 ⇨ 노동분쟁 전문가참여제(참심제) 도입



■ 혁신 필요성

- 노사갈등의 폐해 심각 ⇨ 막대한 사회적 손실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약의 발목을 잡는 주된 원인
- ❖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 선진국 진입 위해 극복해야 할 마지막 사회적 장애요소

☑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 (삼성경제연구소 2013년 연구결과)

- ▶ 한국의 갈등지수, 종교분쟁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2번째로 높음
- ▶ [원인] 지역간, 노사간, 이념간 갈등 관리 실패
- ▶ 갈등지수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개선 시
⇨ 1인당 GDP 최대 21% 증가

- 노동분쟁이 격렬한 대립양상으로 흘러 자주적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노사간 All or Nothing 논리로 맞섬
- 근로형태의 다각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고용에 있어서 양성평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관계에서 분쟁이슈 더욱 복잡·침예·다양해질 것임
- 현재의 노동위원회나 일반 법원에서의 분쟁해결구조로는 대처하는데 한계
- ❖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동위원회가 개별적 노사분쟁까지 처리하고 있으나, 사실상 5심제(지노위 + 중노위 + 3심 소송)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충실하지 않은 심리, 공익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그치지 않고 있음
- ❖ 일반 법원의 노동사건 처리에 대하여도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 有
⇨ 노동분쟁의 새로운 평화적 해결시스템 구축 긴요한 시점

■ 혁신 개요

- 개별적 노동분쟁의 화해적 종결을 위한 분쟁처리시스템 新구축 ⇨



노동분쟁 전문가참여제(참심제) 도입

- ❖ [담당 사건] 해고, 임금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건
- ❖ [사건처리 주체] 노동심판위원회 ⇨ 직업법관 1명과 노사관계업무경험 풍부한 노동심판원 2명(사용자측 1명, 노동자측 1명)으로 노동심판위원회 구성
 - 👤 (1안)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국무총리 산하 독립된 분쟁처리위원회로 구성 ⇨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의 개별적 근로관계분쟁에 대한 심판기능 **흡수**
 - 👤 (2안) 법원 내 설치 ⇨ 제도 도입 초기에는 노동위원회 판정 기능 유지하여, 노동분쟁 당사자들에게 **절차 선택권** 부여
- ❖ [신속한 분쟁해결] 1회 기일 조기 지정 + 원칙적으로 3회 기일 이내에 노동심판사건 종국 처리
- ❖ [사건처리 프로세스]
 - 👤 일단 **조정** 시도 ⇨ 실패 시 **심판** ⇨ 불복 시 **소송**으로 이행
 - 👤 **비송사건**으로 분류하여, 법리적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분쟁 실상에 적합한 결론 제시
- ❖ [기대효과] 노동분쟁처리의 전문성·중립성 제고 + 자주적인 분쟁해결절차 마련 ⇨ 단순한 사건 종결을 넘어선 분쟁의 신속·근원적 해결 ⇨ 노사분쟁에 얽여 있는 유·무형의 사회갈등 해소 ⇨ 경제발전의 동력 확보
- 전문법원인 노동법원 설치하는 방안에 비해, 단기간 내 큰 비용 투입 없이 도입 가능
 - ❖ 과거 사개위에서 추진한 노동법원 설치 방안에 대하여, 별도 법원 설립에 대한 부담, 노동위원회 존립과 직결되어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부정론 제기된 바 있음

■ 일본의 노동참심제 성공사례

☑ 2004년 내각 주도로 참심형 노동심판제도 도입 ⇨ 2006년 4월부터 시행



- ▶ 로스쿨 제도, 재판원 제도 등과 함께 **사법제도개혁 일환으로 내각이 추진**
- ▶ **[개혁 배경]**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로 도산기업 속출하면서 노동분쟁 급증하자, 내각 후생노동성, 사법부의 분쟁해결기능 한계 봉착 ⇨ **신속성·전문성 갖춘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구축 작업 착수**
- ▶ **[성과]** 2006. 4.부터 2009. 9.까지 동경지재 노동심판사건 중 약 **78%**가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고 **종국됨 (조정성립율은 71.8%)**
- ▶ **[평가]** 기존의 노사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획기적 변혁**이자, 일본 **사법개혁** 중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소개되고 있음

라. 세계특허(IP)허브법원 추진

■ 혁신 필요성

- 종래의 산업 발전 모델의 한계를 극복한, **IP와 사법서비스 결합**을 통한 **국가 新성장 모델 제시**
-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4위 내에 드는 **특허 강국**의 장점 활용
- 창조경제의 기반인 **IT 기술**을 **핵심**으로 **新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법인프라** 구축
- 일본의 폐쇄성, 중국의 후진성과 비교되는 **대한민국의 개방성, 우수성**을 바탕으로 **선도자로서 행보** 착수

■ 혁신 개요

- **[단기적]** **특허법원에 국제부를 설치**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대외적 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역량 강화** ⇨ **글로벌 IP소송의 선호** 범정지로 자리 잡음
- **[중극적]** **아시아 특허분쟁 해결기구 대한민국 설치**

마. 일반사건 심급구조의 개선

■ 혁신 필요성

- 소송건수 및 상소율의 지속적 증가 ⇨ **재판기간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



- 상고사건 적체로 인해 대법원의 제대로 된 법선언 및 분쟁해결기능 수행에 한계점 압박 ⇨ 최고법원의 기능 저하는 필연적으로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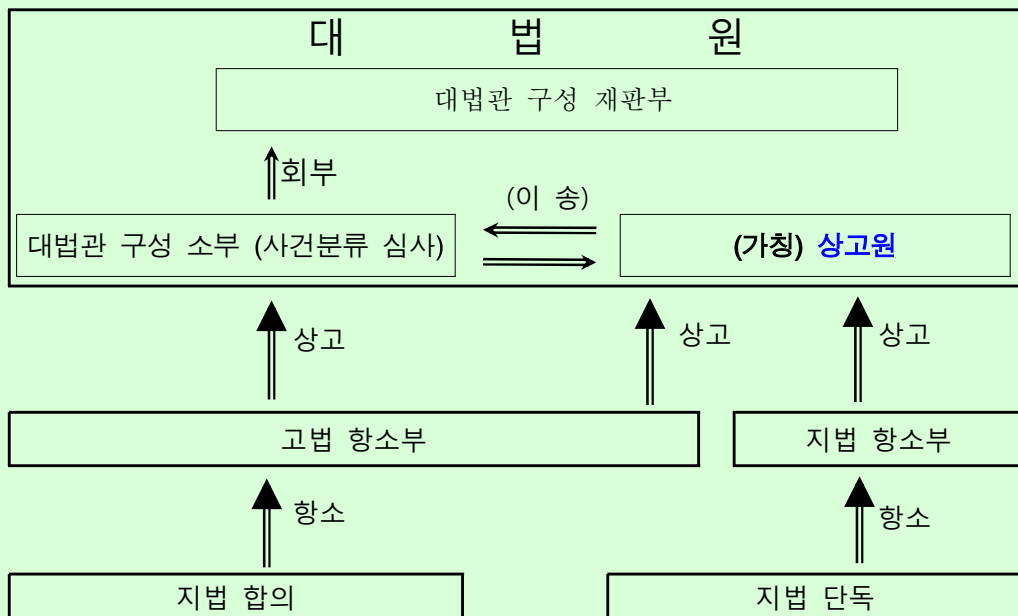
■ 혁신 개요

- ① 사실심 충실화 ⇨ 상소율 하락 ⇨ 총 재판기간 단축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심층 검토
- ② 상고제도의 개선

☑ [원안] 상고법원 설치

- ▶ 대법원의 정책법원化 + 상고법원에서의 개별적 권리구제 기능 강화
- ▶ 신속·충실한 상고사건 처리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대안] (가칭) 상고원 설치



- ▶ 대법원 재판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법원 조직의 일부로 '상고원'을 둠
- ▶ 대법원 심판권을 대법관으로 구성된 부와 상고법관으로 구성된 부가 분장함
- ▶ 신속·충실하게 상고사건 처리할 수 있다는 상고법원안의 장점 그대로 유효
- ▶ 4심제 구도로 비쳐지는 외양 피할 수 있고, 대법원과 상고원 사이의 긴장·갈등 상황 발생 가능성도 낮음



▶ 현재 대법원 조직의 일부를 상고원으로 재편하는 방식 취함으로써, 상고법원 안에 비해 추가 예산·시설 소요 우려 높지 않음

V. 구체적 설득 전략

■ 사전 고려 사항

● ① 최근의 우호적 분위기 등 적극 활용

-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결과 ⇨ BH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
- 특히,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원세훈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실체 판단 문제가 남아 있어, BH 관심 대상에서 완전 소진되지 않은 상태

☑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평가, 향후 예측 등

- ▶ [긍정적 평가] 형소법 제315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기준을 명시하는 등 형사법의 증거법리에 충실한 판결
- ▶ [부정적 평가] 선거 개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정치적 고려에 기한 회피성 판결, 일부 언론에서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규명
- ▶ [향후 심리 및 결과 예측]
 - 원심은 심리전단의 인터넷, 트위터 활동 범위를 확정된 다음, 그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통계적 분석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진 시점과 당시 상황, 게시글의 내용 및 당시 상황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 범위를 판단
 - 대법원 판결로 심리전단의 활동 인정범위가 달라진 범위 내에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종합적, 통계적인 상황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음 ⇨ ∴ 파기환송심에서의 검찰 및 변호인의 추가입증에 의해서 tweet 글의 인정범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가 결정될 것

- 향후 예정되어 있는 정치인 형사 사건에도 BH의 관심과 귀추 주목될 것 ⇨ 사법부에 대한 강경 일변도 입장보다는 주요 현안 관련 점점 모색을 위한 유화적 태도 보일 가능성 충분

☑ 정치인에 대한 주요 형사사건 현황

- ▶ 한명숙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 ⇨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대법원 계속 중



- ▶ 박지원 의원 알선수재 사건 ⇨ 2심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상고 제기
- ▶ 조현룡 의원 뇌물 사건 ⇨ 1심 징역 5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
- ▶ 박상은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 ⇨ 1심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
- ▶ 송광호 의원 뇌물 사건 ⇨ 1심 징역 4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

● **② 민정수석을 우회(Bypass)한 이병기 비서실장과 특보단 접촉·설득 전략의 제도 수정 필요**

- ❖ 성완중 전 의원 자살로 인한 제1차 사정 정국 위기, 강경 성향 보좌진에 둘러싸여 불통 이미지 강화된다는 주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에 대한 VIP의 전폭적 신뢰 지속되고 있는 상황
-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유승민 원내대표 불신임 등 민정수석의 강공 전략 조언이 결과적으로 성공
- 👤 이미 BH 내 권력구조의 중심축이 비서실장에서 민정수석으로 이동하였다는 평
- 👤 특히, 사법부 관련 정책에 대하여는 민정수석에게 힘을 실어줘, 사실상 의사결정권한이 민정수석에게 이양된 상태
- ❖ 사법부 현안 관련 공식 창구이자, 실세 보좌진인 민정수석을 제쳐 둔 채 상고법원 관련 설득타협 전략 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획기적인 설득 카드로 민정수석을 돌파하는 정공법 필요
- ❖ 여러 접촉 루트를 활용한 단계적 접촉·설득 기회 포착하여 상고법원에 대한 VIP의 이해와 협조 구해야 할 타이밍

■ **[1단계] 민정수석실과의 실무 회동 ⇨ 사전 정지 작업**

- 7월 말까지, 법무비서관실, 특보단 등을 통해 민정수석과의 면담 일정 확보
- ❖ [WHO] 연수원 기수, 법조 경력, 지위 등 고려할 때, 기조실장 면담 적절
- 사법부 최대 현안인 상고법원안에 관한 설명과 입법 협조를 구하고, 민정수석의 진솔한 견해를 청취하는 자리로 추진



- ❖ 민정수석은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VIP의 임명권 확보 문제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짐 ⇨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를 통한 VIP의 인사권 보장 방안 등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응 점검
- ❖ 그 외, 상고법원 관련 다른 부정적 견해나 수정 요구 사항 있는지 탐색
- 상고법원안 및 그 대안 등에 관한 민정수석 입장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설득 논리 및 전략 수립에 반영
- 아울러, 사법한류 추진 방안 등 사법부가 국가 경제 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도 함께 제시 ⇨ 민정수석의 反 법원정서 감소 및 긍정적 인식 형성 도모

■ [2단계] 비서실장과의 면담 추진

-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에 유연한 업무 스타일로 평가받는 비서실장과 접촉면 확보
 - ❖ 비서실장의 지위 및 위상 등 고려할 때, 처장님 직접 접촉 필요
-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시급성 등 강조
 - ❖ 사건 폭증으로 인한 분쟁종결 장기화 등이 국민들의 피해 및 전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 주장 ⇨ 참신한 해결방안으로서의 상고법원안의 장점 부각
 - ❖ 상고법관 임명에 대한 VIP 권한 약화 염려에 대한 해명 ⇨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 등 대안 적극 피력
 - ❖ 주요 관심사항 관련 원론적 차원에서의 법원의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 피력

☑ 이병기 비서실장의 최대 관심사 ⇨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

- ▶ 주일대사 경력의 비둘기파로서 최근 한일관계 악화 안타까워함
-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대법원 20013다61381, 2013다67587)에 대하여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 ▶ 주일대사 당시 삼계탕 1500봉지를 들고 후쿠시마 원전피해자 방문하여 피해자들의 냉담한 반응을 녹인 일화로 한일 양국에서 큰 호평받은 것에 자부심



-
- [3단계] 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위한 VIP 방문 일정 활용
 - [예상 일정] 8. 7.경
 - 7월 말에는 VIP 휴가 예정
 - CJ께서 VIP와의 개별 면담 자리에서, 먼저 '경제도약과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분쟁해결시스템 혁신'이 VIP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공공부문 개혁'의 추진체가 될 것 강조
 - 아울러, 심급제도의 개선 등 사법부의 최대 당면 과제에 대한 협조 강력히 요청 ⇨ 정책 추진 실패는 사법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하여 중국에는 국가의 대외적 위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변
 - 상고법원 관련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VIP 임명권 강화 방안 등 수정안 가능하다고 설득
 - [최종 목표]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한 BH의 찬성 또는 적어도 중립 입장 견인 ⇨ 상고법원 입법 성사를 위한 막강한 우군 확보 또는 긍정적 분수령 마련
-

<10.21 원세훈 공판>

검찰 : 박○○, 김○○, 이○○.. 신청서 하나, 의견서 하나, 오전 신문사항

판 : 민주당 고발대리인 이○○, 이○○, 황○○ 오늘의 유머 증인

검찰 사실조회 12군데 중 5군데 회신, 나머지는 독촉 보냈음

검찰이 10월18일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 제출, 변호인 의견은?

검찰 :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취지

10월18일 접수한 신청서 내용은 간단하다. 기존 공소사실 6항,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활동에 의한 범죄실행 부분 있는데,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트위터를 이용한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 내용인 5만여 건 추가하는 내용
기존 공판 등 통해 2012년 2월 신설된 안보 5팀은 트위터 전담하면서 사이버 활동을 해 왔음이 확인됐다. 이번에 추가하는 공소사실은 바로 그 트위터 활동이다.

해외 위치한 트위터 본사로부터 사용자 정보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정원은 검찰의 트위터 계정 확인 요청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 수개월간의 추적 거쳐 어렵사리 사용자 확인 거쳐 이번에 변경 신청

정치 관여, 국정원법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포괄일죄, 따라서 추가 요청한 공소사실도 기존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사실 동일성은 당연히 유지된다. 설령 죄수 관계 달리한다 하더라도, 사이버 4개팀 70여 명에게 전달돼 순차 공모하에 .. 안보 5팀의 트위터 활동 구체화해서 추가한 정도이므로, 동일성 인정 여부에 의문은 없다. 이미 기존 공소장에 관련 내용 명확히 기재했고, 트위터 팀의 활동도 심리 진행돼, 향후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 없을 듯.

내부 보고 과정, 체포 적법성 등은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는 장애 요소 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변호인 : (동인 김○○) 검사 변경 신청으로 이 사건이 더더욱 정치쟁점화되고 있다. 정치적 공방 아니고 냉철하고 차분하게 공선법 위반인지 법적 관점에서 실제적 진실 밝혀지는 장이 되길.

세밀한 검토 필요한 부분 많다. 상세한 변호인 의견은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겠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잘못됐다.

1. 공소장 변경 통해 추가하는 부분은 기소된 부분과 동일성 없다. 포괄일죄 아니다.
2.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기초가 된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체포 수사 과정은 적법 절차 아니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3. 이 사건 범죄 행위는 심리전단 직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활동, 범죄일람표 순번 하나하나의 행위다. 피고인이 지시했다는 행위 자체는 이 사건 범죄 관계 아니고 공범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공소사실 실행이다.

7행 결어 부분, 이○○, 민○○와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장 직위 이용해 낙선 목적 선거운동 했다고 돼 있다. 지위 이용해 범죄 실행 행위 했다는 다소 모순된 부분 있어서 지난 공판에서 검사들에게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들 상대로 정치 행위하거나 선거운동 한 거냐 물었을 때 검사는 그게 아니라고 답변했다.

원칙적으로 범죄일람표 하나하나가 실제적 경합 관계다. 김모 직원이 올린 댓글 클릭 행위들 간 관계가 문제된다. 포괄일죄 일반론 돌아가, 동종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해서 행하고, 그 직원이 여러 가지 포괄일죄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든다. 국정원 A와 B의 행위 간에 여러 직원들 간 행위도 포괄일죄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원칙적으로 범죄 일람표 하나하나가 실제적 경합범, 가사 직원들 하나하나가 포괄일죄 하나더라고, 여러 직원들 행위는 다시 실제적 경합범.

최소 조직 단위 같고, 상호간 의사 연락, 상황인식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포괄일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직 범죄, 업무 다른 경우에는 상호 행위에 대한 인식의 동일이 없기 때문에 포괄일죄 아니다. 추가 하려는 범죄사실과 이미 기소된 범죄사실 죄수 관계 보겠다.

이 사건 심리전단 각 안보 사업팀간, 팀 안에서도 각 파트 간, 상호간 서로 업무는 잘 알지 못 하고 알 수도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트위터 상의 정치 관여나 선거운동 김○○ 등은 심리전단 안보A팀의 B파트원으로 알고 있다. 반면 인터넷 활동 한 재판 과정 나온 사람들은 심리전단 안보 3팀의 5파트원이다.

아예 팀이 다르다. 상호 하는 일은 내용 알지도 못 하고 알 수도 없다. 두 파트 간 활동이 단일한 범의로 이뤄질 수 없음은 명백하다.

국정원 업무 환경에서 국 규모 심리전단에 같이 속해있더라도 안보 다른 팀과 5팀, 다른 국정원 직원들 간 행위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특정 후보자가 자신 선거구에서 중앙부처 활동 빙자해 자신 선거 운동. 1심은 여러 행위를 실제적 경합범으로 판단, 2심은 단일한 범위의 포괄일죄로 판단. 대법원은 2005도1925호 판결, 여러 죄를 하나의 죄로 인정하려면 범행 단일성, 각 범행의 시간 장소성 연관성, 방법의 동일성 등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2개월 남짓 서로 다른 장소에서 별개 사람들 대상 행해져,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포괄일죄로 본 원심 판단 위법하다고 판단함.

기소 내용의 실행 행위자 다르고, 상호간 의사 연락도 없음이 명백하다.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통해 추가하려는 기소사실과 동일성 없다

선거운동 관련해 검사는 공직선거법 말미 부분 안 바꾸고, 특정 정당과 후보자 낙선 목적 운동이라고 한다. 낙선 목적 대상이 된 후보자가 여러 명이면, 개개 후보자별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돼야 한다. 여러 후보자에 대해 포괄일죄 되려면 특별한 요건 필요. 어떤 후보자에 대한 당선 목적과 어떤 후보자에 대한 낙선 목적이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없음.

5만여 건 범죄일람표 다 보진 않았지만, 상당 부분이 특정 후보자 지지글로 구성돼 있다. 낙선 목적 선거운동인지, 추후에 다시 당선 목적 선거운동으로 기소하려는 건지, 낙선 목적 선거운동과 당선 목적 선거운동이 하나의 포괄일죄 된다는 것인지

2.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은 국정원 직원의 책임 및 중요성, 신분 등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특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 목적에 따라, 동법 제17조는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원장 허가 받아야 된다고 명시. 3항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그 직원이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 받아 국정원장 허가 절차를 추가적으로 두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허가 받지 않고 진술하면 형사 처벌 조항까지 제23조에서 두고 있다.

트위터 활동했다는 직원에 대한 수사에서는 이 절차 없었음. 직원 체포돼 석방 될 때까지 이 조항을 고지받지도 못 했고, 국정원장 허가 받았는지도 묻지 않았고, 허가 받을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 때 당시 이 질문 내용과 국정원 직원 답하는 내용은 직무상 비밀 아니고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라 허가 받을 필요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 도청 사건에 대해 법원 판단 있었다. 이 사건 도청 자료의 내용의 수집 경위에 관한 부분, 피고인이 안기부 직원으로서 정보수집 팀장, 주요 인사 도청해 녹음테이프 만들고, 테이프 토대로 녹취록 만들어 보관한 것은, 안기부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국정원법도 국정원의 조직 편제 인원 예상 등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있는 점, 이런 사실이 누설될 경우 국정원의 정상적 정보 수집 활동 기능 저해.. 피고인 업무 대부분이 도청 등 비합법적 활동이었고 수집 내용 대부분이 국내 정치 관련된 것이어서 안기부 고유업무와 연관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안전기획부 고유 정보 수집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안기부에서 퇴직한 후라도, 그런 사항은 비밀로 보호할 가치 있다고 판단돼, 그런 사항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국가정부기관의 불법적 활동에 관한 정보라 해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 문제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정식 인사발령 받고 정식 조직에서 근무한 점, 도청팀 수집 정보는 공식 체계 따라 상부 보고된 점 등 사실상 직무수행의 범위에 속하는 게 분명한 이상,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 구속할 때는 국정원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검사는 구속 아닌 체포라서 통보 의무 없다고 주장. 하지만 변호인은 체포도 구속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직원법에는 국정원 직원 수사 시작하면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검찰 실무상 이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 피고인에 대해 범죄 인지서 작성됐고 그 부분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한 건지..

=>동일성 인정 안 되고 기초 되는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

검사 : 공소장 변경 핵심은 동일성 부분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관계없는 체포 부분 언급해 다시 얘기한다.

포괄일죄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의견서도 내고 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의견서 내겠다.

공소장 변경 요건 관련 없는 부분, 변호인 주장 중 국정원직원법 언급-> 국정원에서 파견된 변호인이 세 피의자를 계속 접견했고, 한 피의자 조사 때는 수사에 참여도 했다. 참여하면서 허가에 대해 고지했냐고 묻길래, 변호인이 계속 접견해서 고지된 걸로 알았다고 말했고, 변호인이 안 됐다고 해서, 직접 가서 변호인 앞에서 고지 했다.

두 번째 구속 체포 관련해, 법에 구속으로 돼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과 체포는 분명 달라, 문제 없고, 국정원 직원 신분은 비밀이라, 체포 영장이나 압색 영장에서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에 대해 본인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라, 국정원에 체포나 압수수색 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체포 직후 국정원 법률 보좌진에 공식 통보했고, 신병 확보 이후에는 수사개시 통보와 체포에 대해 공문으로 통보했다.

체포 당시 아무 문제 없는 일인데, 자꾸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체포한 피의자 조사 결과 토대로 공소장 변경신청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받으려면, 우리가 통상 석명자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국정원 중요성 감안해,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 수집한 이후에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받은 것이고,

백번 양보해 변호인 얘기처럼 조서에 문제 있다 하더라도, 그거 없어도 충분히 범죄 소명할 수 있다

공판 과정에서 유무죄 과정에서 다룰 일이지, 이 문제로 공소장 변경 신청 문제제기하는 건 맞지 않다.

마지막으로, 검찰 내부 문제이기도 한데, 피고인에 대한 인지 절차 제기. 남아 있는 사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해 피고인 압색영장 받고 있고 그거 근거해 이번 부분에 대해 공소장 변경 신청한 것이고, 남은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아직 공소권 없음 처분 안 한 것이다.

변호인(김○○) : 국정원 직원 세 명 체포돼,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다. 저는 한 8시쯤 가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직원법에는 직무상 비밀 허가 없이 누설하면 처벌하는 조항 있는데 그 직원은 그 내용 몰랐고 고지도 안 받았더라. 고지 하고 그 다음에 한 게, 고지는 끝났고, 하지만 지금 심문하는 건 직무상 비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질문한다고 얘기했다.

허가 받을 기회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참여했던 당사자는, 만약 내가 진술하는 걸로 인해 고발되고 형사 처벌되면 어떡할지 걱정하고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 관련 규정 고지하고 나서 허가 받고 심문하는 것이 법률 정한 국정원 직원법 지키는 거다.

이○○ : 국정원 법률 보좌관 통보가 무슨 말? 법률보좌관이 국정원장이냐?

판사 : 변호인 말은 포괄일죄 아니고+위법수집증거에 의한 신청 두 번째 쟁점은 공소장 허가 이후에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으로 인해 공소장 변경 허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전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인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다음에 나아갔을 때 다뤄져야 할 문제다. 우리도 검토해 보겠다.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제적 경합이다 라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재판부로서도 즉답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다.

이○○ : 만약 이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됐다가 조사 다 하고 최종결론에서 이게 공소권 없음 처리 되면, 먼저 심리된 사건이 문제된다. 검찰 주장이 맞다면, 원장 입장에서는 책임져야 할 문제지만, 5파트원들끼리는 정보 공유했더라도, 추가된 다른 팀은 포괄일죄가 되면 다른 팀의 범죄 행위에도 처벌이 미친다.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추가 기소 여지가 있어 영향 있다. 재판부가 충분한 시간 갖고 검토해 주길 바란다.

-----5분

휴정

판사 : 신청 결정에 대한 여부 오늘은 보류. 양측이 다음주 월요일까지 10월 28일까지 최수 문제 관련 의견서 서면 작성해달라. 10월30일 수요일 오전 11시 기일 한 번 더 잡아, 공소장 변경 여부 판단하고 다음 절차 진행하겠다.

판사 : 증인신문 , 유○○, 진행

-

검 : 수서서 사이버범죄팀장.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수사팀 일원, 수사 과정에 서 수사 서류를 직접 기안해 작성하기도 하고, 다른 기안자로부터 올라온 서류 검토.

오늘의유머 운영자 임의제출 및 66개 아이디 연관성 분석. 2013년1월17일자 수사보고서.

오늘의 유머 운영진에게 김○○ 노트북에서 나온 아이디 16개 근거로 조사해 추가 50개 아이디 발견했다는 내용? 네

김○○ 닉네임 11개, 거기서 추출된 17개 닉네임 등 전체 66개 닉네임으로 찬 반추천 한 것 등 분석한 내용 있지? 네

수사보고서 제목, 아이디 33개 사용자 이○○ 확인...2013년2월7일자, 경사 최 ○○ 기안 작성, 증인이 검토, 수사과정 임○○ 결재 문서. 이 보고서 내용, 각 각 닉네임별로 접속 아이피 정밀 분석해, 이○○ 주거지 일원동 심플하우스 고 시원 비롯해, 당시 추적한 66개 닉네임의 상호 연관성 정밀 추적 분석한 것? 네.

변호인 반대 신문 : (이○○) 김○○ 휴대전화 압수 직후, 김○○ 변호인 강○ ○으로부터 업무상 휴대전화가 업무상 비밀이라 압수 불가능 의견서 받았지? 네. 의견서 제출 후에도 형사소송법 111조에 의해 휴대전화 압수 위법하니 속 히 반환하라는 공문 국정원에서 받았지? 네. 검사 지휘 받았나? 정확히 기억 없다

판 : 주신문과 관련 없는 신문이었다.

검찰 수사관 증인신문 : 김○○ 원○○ 이○○

/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야당 설득 및 대응 전략

2015. 9.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안에 대한 법사위 내 야당 의원들의 무관심·반대 기류 심각한 상태**
 - 최근 한명숙 사건 선고 이후, 급격히 야당 내 부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 분위기 반전의 전기 없이는, 법무부와의 협상을 매개로 한 여당 설득에 성공하더라도, 법률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됨
- **반대 성향 야당 의원들에 대한 구체적 설득·대응 전략 모색 필요**
 - 법률안 통과를 위한 시간적 여유 부족한 상황에서, 반대 의원들의 입장 전환 또는 적어도 극렬한 반대 의사 표명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실효적 설득 방안 절실
 - 법사위 내부 포함 야당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 설득 방안 수립

2. 상고법원 관련 최근 야당의 현황

가. 야당의 전반적 분위기

- **당 지도부(문재인 당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 - 무관심**
 - 최근 중앙위원회 혁신안 의결, 문재인 대표 재신임 등을 둘러싸고 급박한 상황 전개로 상고법원 자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상고법원안은 그 자체로는 정치적 쟁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법사위에 일임하는 분위기임**
- 다만, 한명숙 사건 선고 결과에 대하여 정치적 해석 가미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크게 확산되어 있어, 상고법원 추진에도 상당한 난관으로 작용할 여지 있음**

☑ **문재인 당재표 8. 21.자 제7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사법부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특히 **대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화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판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신호탄이다.**”

▣ **법사위 - 강경 분위기 고조**

- 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오해
 - 상고법원 운명이 청와대 내지 여당 결단에 달렸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숨은 의도가 담긴 판결이라고 해석
 - 특히 대법원이 상고법원 통과를 위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판결을 하였다는 오해가 많음
 - 앞으로 진행될 야당 정치인에 대한 판결에서도 그와 같은 경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짐
- 보수화된 사법부 주요 추진 정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인식 팽배
 - 한명숙 사건 선고로 대법원장님 취임 이후 대법원이 보수화되었다는 편향된 인식 더욱 증폭됨
 - 대법원장님 최대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하여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서, 이를 좌초시켜 **사법부를 견제하겠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음
- 일부 의원들의 경우 무관심 스탠스로 전환하려는 분위기
 - 우호적 찬성 의원들도 강경 분위기에 밀리는 상황
 - 당내 계파 싸움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임기 4년차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할 상황에서, **주요 정치 현안 아닌 상고법원에** 대하여 무리하게 **관심과 힘**



을 기울이지 않겠다는 분위기 감지되고 있음

나. 주요 법사위원들 입장

1) 반대 성향 의원들 입장 더욱 고착

■ 전해철 의원

- 전해철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맡아 한 전 총리와 개인적 친분이 두텁고 더구나 한 전 총리가 당 대표일 때 공천을 받았음
- 법사위 간사로서 당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책임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외적·공식적으로는 한명숙 사건 판결을 계기로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상고제도 개선의 전제조건임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취지로 주장

☑ 전해철 의원 최근 언론 인터뷰(연합뉴스 8. 23.자) 발언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판결이 나온 배경 중 하나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결여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상고법원 설치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국회 내부에서는 이보다 훨씬 강한 톤으로 상고법원안 및 사법부 전체에 대하여 신랄할 비판의 목소리 높이고 있다고 함

☑ 전해철 의원의 국회 내부에서의 비공식 발언(의원실 보좌진 전언)

“이번 한명숙 사건 선고로 상고법원은 물 건너 갔다. 상고법원 법안에 결코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이다”

■ 서기호 의원

- 법관 시절 재임용 탈락 등으로 인한 법원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벗지 못하고, 상고법원에 대한 고의적인 발목 잡기 스탠스 유지
- 사실심 충실화가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 내부의 소수 반대 법관들 의견을 입수하여 상고법원이 사법부 내부에서도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한 선부른 정책이라고 공격

☑ 서기호 의원, 9. 15. 대전/광주고법 국정감사 질의



“사실심법관 증원, 사실심충실화를 통해 상고사건을 줄이고 상고사건 제한해야 한다는 차○○ 판사 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2) 찬성 또는 유보 의원들도 상고법원 찬성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없는 분위기

■ 서영교 의원

- 기본적으로 사법부와 우호적 관계 유지하려는 생각에서 상고법원에 대하여 사실상 찬성에 가까운 유보 입장 취해 옴
- 그러나 정치적 상황에 항상 민감하게 촉각을 세우고 대응하는 스타일답게, 한명숙 사건 선고 이후 야당 내 분위기에 편승하여 최근 신중론으로 돌아섬

☑ 서영교 의원 최근 언론 인터뷰(연합뉴스 8. 23.자) 발언

“그렇지 않아도 상고법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번 한 전 총리 판결이 향후 논의의 중차대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박지원 의원 등

- 박지원, 임내현 등 찬성 의원, 우윤근, 이춘석 등 사실상 찬성에 가까운 유보 입장 의원들도 당분간 당내 강경파 목소리에 눌려 상고법원에 대하여 나서서 옹호하기 어려운 상황
- 야당 내 일각에서는, 그간 사법부와 꺾끄러운 관계가 부담되어 상고법원 지지 의사 밝혔던 박지원 의원 등이 최근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받을 뻔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음

3. 설득 및 대응전략

가. 기본 방향 ⇨ **야당 법사위원 접촉·설득을 통한 법사위 내부 분위기 전환**

- ① 법사위원 직접 접촉·설득과 야당 지도부 등을 통한 우회 설득 방안 병행



- ② 한명숙 판결에 대한 비판의 온도차를 고려한, 접촉·설득 논리 및 시기 등 차별화
- ③ 법사위 내 지위, 상고법원에 대한 기존 입장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접촉·설득 추진
- ④ 최후의 카드로, 파격적 설득 방안 모색

나. 구체적 접촉·설득 방안

1) 설득의 주된 논리

■ 법원의 '진정성'

- 원세훈 사건과 한명숙 사건에서 대법원의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
- 대법원의 원세훈 사건 판결, 한명숙 사건 판결은 법과 원칙에 따른 독립적인 판결 결과이고, 상고법원 등 대법원이 추진하는 정책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킴
- 대법원의 한명숙 사건 판결에 대한 야당의 비난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주지시킴 ⇨ 이를 매개로 법원에 우호적인 야당 중진의원들 설득에 보다 주력

■ 상고법원 법안은 정쟁의 산물이 될 수 없고 '진정한 의미의 사법개혁'

- 현재의 상고심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상고심 제도 개선은 향후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사법제도의 틀을 만드는 중차대한 작업임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서는 항상 다양한 반대 의견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반대 의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고심제도 개선을 미룬다면 국회 본연의 임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들



이 피해를 입음

- 이번 정기국회가 19대 국회에서 상고법원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고, 이를 놓친다면 최소 10년 이상 현행의 비정상적인 상고심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호소

■ 법안 자체의 수정 가능성

- 언제든 쟁점 사항에 대한 국회 수정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음을 표명

2) 주요 의원별 설득 방안

■ 전해철 의원

- 야당 간사이자, 서기호 의원 등 야당 소장 의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설득 대상
- 그러나 (중략), 최근 한명숙 사건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일정 기간의 냉각기 가질 필요
- 냉각기 거친 후, 정서적·감성적 흡소 전략 구사
 - 이성적·논리적 접근으로 설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님
 - ①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상고사건 적체로 처해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주문, ②그나마 사법부만이 여당과 검찰을 제어·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역할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사법부 최대 추진 사업에 협조 또는 반대 목소리를 낮춰 줄 것 흡소

■ 법사위원장

- [목표] 기존 지지 입장 확고히 흔들리지 않도록 설득
- [방법] ①법사위의 법률안 심사 실적 매우 저조하므로, 법률안 심사 드라이브 걸겠다는 법사위원장의 의지와 역량 적극 활용, ②적극 접촉으로 인적 유대관계 강화 통한 정서적 접근, ③내년 총선에서 유



리하게 내세울 수 있는 공약의 기초 소스 제공(ex. 대전 제2전산정보센터 설치, 특허법원 관할 집중 법률안 통과 등)

▣ 그 외 야당 법사위원들

- 지속적 접촉·설득으로 상고법원에 대한 관심 꺼지지 않도록 함
- 박지원, 우윤근, 이춘석 의원 등 중진의원들에게 리더십 발휘 요청

3) 구체적 방법

▣ ① 직접 접촉

- 한명숙 사건으로 매우 격앙되어 냉각기 필요한 의원 제외하고, 지속적인 만남 추진
- 안전 지정 협조 요청
 - 국정감사 이후 열리는 최초 법안 심사 단계부터 상고법원 법안이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회의 일정과 안전이라도 잡아 달라고 도움 요청
- 의원들 수정 요구안 반영
 - 의원들이 지적하는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수정안을 미리 만들어 계속 접촉하면서 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의원들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에 치중

▣ ② 야당 지도부 등을 통한 우회적 설득

- 당 지도부 상황
 - 현재 중앙위원회 혁신안 의결, 문재인 대표 재신임, 내년 총선 전략 수립, 국회의원 공천 방안 확정 등 당내 시급한 현안이 너무 많아 지도부를 설득하여 상고법원에 대한 ‘당론 찬성 내지 지지’ 등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이끌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지도부 면담 추진
 - 다만 문재인 당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법조인이므로, ‘상고심제도 개선 필요성’



의 관점에서 면담 추진은 시도해 볼 만함 ⇨ 면담 성사만으로도 야당 내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데 상당한 영향 있을 것

- **[최재천 정책위의장]** 법원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점 활용하여, 상고심제도 개선 필요성, 법원의 진정성 등을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당내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과 법사위 간사와 1소위 위원들 설득에 대한 자문과 도움 요청

- **[문재인 당 대표]**

- 전해철 의원에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
- 그러나 현재 급박한 당내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향후 정국 상황을 보고 판단할 필요 있음
- 법원 내부의 친분 두터운 인사(ex. 경남고 동창인 인천지법 김○○ 부장판사 등)를 통해 비공식 사전 접촉하는 방안 모색 가능

● 전병헌 의원을 통한 전해철 의원 설득 방안

- 전병헌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사적으로 절친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병헌 의원 본인도 전해철 의원 설득의 적임자로 자인하고 있음
- 상고법원에 대해 전폭적 지지 의사 밝히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정치인답지 않은 우직하고 솔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추진력도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전해철 의원 설득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전병헌 의원 9. 17.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면담 시 발언**

“상고사건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고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상고법원 도입을 연결짓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당내 지도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큰 관심 없는 상황이므로, 지난 5월 조선일보 기획기사와 같이 유력 언론에 상고사건 적체로 국민들이 직접적 피해 입고 있는 실제적 사례 등을 실감나게 부각시키는 이벤트성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야당 의원들을 움직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다만, 최근 전병헌 의원이 속한 정세균 계파와 ‘친노’ 간 갈등 불거진 상황에서, ‘친노’ 핵심 브레인인 전해철에게 주요 정책 관련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분석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 있음

☑ **머니투데이 9. 9.자 “정세균, 문재인 대표에 당 혁신위한 대결단 촉구”**



「5선 의원인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가 9일 문재인 대표에게 당의 혁신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가 야권 전체의 단결과 통합, 혁신의 대전환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대결단을 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범친노 수장인 정 전 대표가 문 대표에게 사실상 2선 후퇴를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 [3] 대법원 국정감사 활용

-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예상되는 의원들의 상고법원 관련 질의에 대한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상고법원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필요
 - 상고법원 도입의 진정성, 불가피성, 시급성 논리 유지
 - 특히 대법원장님 말씀을 통해서는 ‘상고법원이 법원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법원의 진정성을 꼭 알아 달라’ 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법사위원들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도
- 국정감사장이 법정 막말, 처신상 잘못 등으로 **Negative Hearing**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내부 단속에 유의

■ [4] 언론을 통한 간접적 압박

- [목표] 언론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확산 ⇨ 국민의 목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법사위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함
- [활용 언론] 주요 메이저 언론 ⇨ 조선, 중앙, 동아 등
 - 야당 의원들도 한겨레, 경향신문보다 3대 주요 메이저 언론 기사 내용에 더 민감
- [기사 방향 ①] 상고법원 설치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점 재확인
 -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으로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제도 개선 강조
 - 현재 상고심 지연 폐단이 두드러지는 구체적 사례, 국민 실생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소개
- [기사 방향 ②] 올해 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각인



- 17대부터 이어온 상고심제도 개선 논의 경과 심층 소개
- 19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향후 개선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점 설명

● [기사 방향 ③] 법사위 논의 지지부진에 따른 책임론 부각

- 작년 12월 발의 이후 지금까지의 법안 심사 경과, 공론화 과정, 찬반 의견의 허와 실 등 상세 소개
- 결국, 법사위 소수 의원들의 독단과 오해로 인해 제도 개선 좌초될 상황이라는 위기의식 확산 ⇨ 해당 의원들의 심리적 부담감 가중

■ ⑤ 법사위원장, 법사위 여야 간사 등 초청 대법원장님 공관 만찬 실시

- [취지] 대법원장님께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법사위원장, 법사위 여야 간사 등을 상대로 직접 상고심제도 개선의 필요성 설명하고 국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 마련
- [기대효과] 해당 의원들이 사법부의 상고심제도 개선 의지와 절박함을 실감하고, 법률안 처리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매우 커질 것
- [고려사항 ①] 언론 등 외부의 시선 ↔ (i) 이미 상고법원이 대법원장님께서 적극 추진하시는 최대 역점 사업이라는 사실 공론화되어 있는 상황, (ii) 법률안 통과 예측불허인 시점에 최선을 다한다는 시각 외 새삼스러운 비판은 없을 것
- [고려사항 ②] 대법원장님 위상에 흠이 생길 우려 ↔ (i) 격에 맞지 않은 점이 없지 않으나, 이미 언론사 사회부장 등 그보다 훨씬 격이 낮은 인사 초청한 바 있음, (ii) 최후의 카드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우려되는 사정은 감수하고 추진 검토할 필요 있음
- [시기] 10월 중순경 실시
 - 10. 8.까지 국정감사 예정되어 있어 그 이전 실시 부적절



-
- 법률안 심사 개시될 10월 말 이전에 실시하여, 마지막 입법추동력 확보의 전기로 활용

- [실시 방법 및 초청 대상]

- 우선, 법사위원장 및 양당 간사(이한성, 전해철 의원) 등 법사위 집행부만 초청하여 실시 ⇨ 참석자들 반응 및 성과 점검
- 1차 공관 만찬 실시 후, 기대효과 큰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전체 법사위원들 대상 추가 실시 여부 검토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 분석

2018. 7. 31.

기획조정실

1. 선고 요지

▣ 서울고법 2014노762 내란음모 등

- 제9형사부 ⇨ 재판장 이○○ 부장판사, 주심 진○○ 판사

▣ 1, 2심 선고 결과 비교

- 공소사실별 유무죄 내역

공소사실		1심	항소심	
내란	선동	유죄	유죄	파기자판
	음모	유죄	무죄	
국보법 위반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유죄	유죄	
		이유무죄	이유무죄	
		무죄	무죄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별 양형 내역

피고인	인정 죄명	구형	1심	항소심
이석기	내란선동 국보법위반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이○○	국보법위반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조○○	국보법위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김○○	내란선동 국보법위반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김○○	국보법위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홍○○	국보법위반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한○○	국보법위반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내란음모죄 무죄 이유

- ①이 사건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음모죄의 주체가 될 수 있기는 함
 - RO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 ∵ RO에 관한 제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나, 조직 체계·구성원 등에 관한 것은 추측 진술에 불과하므로
 - 그러나 RO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회합 참석자들은 어느 정도 조직화된 다수인으로서 내란음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②하지만, 회합 참석자들이 피고인 이석기의 선동에 따라 내란범죄의 실행에 합의하는 단계에는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이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여야 하고,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 즉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의 윤곽은 어느 정도 특정하여 합의하여야 함
 - 회합 참석자들이 구체적 준비방안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함

2. 여론 동향

가. 정치권

■ 새누리당 ⇨ 부정적인 평가 속에 대외적으로는 신중함 유지

- “사법부의 결정인 만큼 일단 존중은 함, 그러나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러움, 아직 대법원의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까지 결과를 지켜보겠음”
 - 내부적인 분위기는 비판적인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짐

■ 새정치민주연합 ⇨ “2줄 논평”, 역풍을 우려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

- “사법부의 판결을 주목함, 앞으로 최종심에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가감 없이 가려지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음”
 - 최대한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임



■ **통합진보당** ⇨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

- “사실상 무죄임이 인정된 것임, 내란 선동 혐의의 유죄 선고는 끼워 맞추기식 정치재판, 대법원에서는 내란 선동 혐의 역시 무죄로 판명날 것”

나. 언론기관 보도 내용

■ **전반적 분위기**

- 판결이나 재판부에 대한 비판에서는 한발 물러난 상태에서,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세월호 사건 등 다른 이슈에 다소 밀리는 듯한 분위기 ⇨ 심층적인 분석 기사나 의견 표명이 상대적으로 적음

일선 기자들의 의견

- ▶ **연합뉴스 이○○ 기자** ⇨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결론이 뒤집힌 것이 의외였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충분히 이해가 됨, 기자들의 의견은 소속 언론기관 입장에 따라 나뉘고 있음”
- ▶ **KBS 이○○ 기자** ⇨ “양측 입장을 절충한 절묘한 한 수라는 것이 다수, 다만, 여전히 내란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크므로 그들의 행동을 내란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을 가지는 기자들도 있음, 보수 성향의 기자들도 핵심 혐의가 무죄가 되기는 했지만 형이 꽤 높게 나와서 수궁함, 진보 성향의 기자는 핵심 혐의가 무죄가 되었는데도 형이 높다는 점에 대하여 불만, 김○○ 변호사가 한 발언(내란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무죄라는 말)이 맞는지 궁금해 함”
- ▶ **뉴스토마토 전○○ 기자** ⇨ “고개가 끄덕여지는 결론이고 기자실 반응도 좋음”
- ▶ **조선일보 최○○ 기자** ⇨ “곧 이 판결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갈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김”

■ **성향별 보도 태도**

- 보수 언론(조·중·동) ⇨ 중립적 입장 + 내란음모 무죄 다소 비판

특히 양형이유를 강조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국가기간 시설 파괴와 전시에 어떻게 행동할 것 인지를 논의했음이 명백하고 녹취록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사회분열과 혼란을 조장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내용 부각

- **진보 언론(한겨레·경향) ⇨ 중립적 입장 + 내란음모 무죄 긍정 평가**

특히 무죄이유를 강조
 ▶재판부가 **RO의 실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부각

■ **기타 보도 내용 ⇨ 각계 입장 등**

- **서울고법 공보관 인터뷰 내용**

- 채○○ 고법판사 ⇨ “현직 국회의원이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내란을 선동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내란음모죄는** 범죄의 주체성은 인정되나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라는 취지입니다.”

- **이석기 피고인 측**

- 김○○(이석기 피고인 변호사) 인터뷰 ⇨ “내란음모가 무죄면 내란선동도 당연히 무죄입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압감의 표현이 아닌가**”

- **법무부의 입장에 관한 분석 보도**

-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평가**(ytn, Newsis)

-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관한 분석 보도**

-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정당을 해산해야 할지 말지를 먼저 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뉴스y)

-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Newsis)

- 이번 재판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에서는 이석기 의원 측에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조선일보)

3. 향후 전망

가. 국회

▣ 대법원 국감에서 가장 큰 이슈로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

- 특히 새누리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반면, 새정치국민연합은 보수적인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중립적인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분위기 예상

나. 헌법재판소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미칠 영향

- 정당해산 결정에 부정적 요소
- 1]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음
 - 법무부의 그동안의 논리는 ‘RO=통진당’ 이므로 위헌정당이라는 것
 - 130명 이상의 조직원을 가진 RO의 실체가 인정되었다면 그 자체가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입증할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을 것임 ⇨ 그러나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조직적인 위헌성’ 이 직접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 2]내란음모죄에서의 ‘구체적 합의’ 를 인정하지 않음
 - 이석기 등 일부가 ‘선동’ 은 하였으며, 조직원들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없음 ⇨ 일부 개인의 일탈 행위이지 조직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해석 가능
- 정당해산 결정에 긍정적 요소
- 1]내란선동죄는 인정되었음



- 선동의 상대방인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강연 내용에 공감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의 실행을 결의하고, 나아가 이를 실행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
- ②회합의 조직적 성격도 인정(RO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방론으로 실시)
 - 적어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원들 중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고, 그들 사이에는 피고인 이석기를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내란음모죄의 주체가 될 가능성도 갖춤)
- ③국가보안법위반 역시 대부분 인정
 - 단순한 개인의 서적 보유 등의 행위가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이름을 걸고 한 이 사건 회합 자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위 각 행위를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것임
 - 한 두 명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간부진 다수(7명의 피고인)** 모두가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
 - 특히, 이석기 피고인이 소지한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문건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시 ⇨ 이는 통진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이적성이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해산 결정에 **긍정적 요소**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2013. 5. 12. 회합의 성격에 관하여, 이석기 피고인 등이 자신의 피고 사건에서는 **통합진보당의 정세강연회**라고 주장하는 반면, 통진당 측이 현재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는 **통진당의 공식 모임이 아니라** 이석기 피고인 등 일부 당원들의 **돌발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 ⇨ 법원의 판결과 소송기록이 현재에 송부되면 그 주장에 모순이 드러나게 될 것임
- 종합 검토
 - 1심의 결론보다는 정당해산 결정에 **부정적 요소가 증가**하였으나,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고 결론은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오히려 현재가 충분한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통진당이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도 형사소송법이 준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였음 ⇨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

☑ 2014. 4. 23. 서울변회 개최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절차규범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 증명의 정도에 관하여, ①형사사건처럼 법관이 유죄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②민사사건처럼 합리적인 판단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뉘기도 함

■ **헌법재판소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①법원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히려 현재로 하여금 다양한 결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 것임 ⇨ 현재의 결론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본 전제가 충족됨
- 그동안 독자적으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법원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심리 결과를 기다려 이를 참고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심리 방식 자체로는 폭발적인 관심을 끌지는 못함 ⇨ 하지만 결론에 대한 관심 증폭으로 인하여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
- 높은 수준의 사회적 관심 ⇨ 헌법재판소의 위상 강화 ⇨ 재판소원 도입 등 법원 재판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시도를 가속화하는 동력으로 작용
- ②만일 현재가 이 사건에 대법원의 공개변론 중계방송과 비슷한 방식의 변론 중계방송을 시도하게 된다면 사회적 주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흥행에 유리한 다양한 요소

- ① '해산이냐, 아니냐'라는 이해하기 쉬운 간명한 쟁점
- ② 이정희 대표, 황교안 장관 등 지명도 높은 유력인사 직접 변론
- ③ 특히 이정희 대표에 대한 비호감적인 사회적 관심이 여전한
- ④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쉽게 예상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결론



- 현재까지는 현재 내부에 **변론 중계방송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하지만, 긍정적 효과가 실시 방식에 대한 부담 등 부정적 요소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입장 변경 가능성도 없지 않음
- ③ 현재는 **최종 결론의 시기**를 대법원 판결 시기를 고려하여 자신들의 **존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로 조절할 것**으로 보임
-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려 할 가능성 있음
- 재판소원·한정위헌 결정 등의 이슈, 개헌 논의 등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로 선고 시점을 조절할 것
- ④ 더 나아가 **종국적인 결론에서도 그러한 정치적 고려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과감한 정당해산 결정의 기대 효과

- ① 보수적 정치 세력과 일부 여론을 확실한 우군으로 확보
- ② 법원에 비하여 **선명하고 강한 이미지** 선점
- ③ 결정 이유에서 **법원의 사실 인정에 관하여 우회적·간접적으로 비판하여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긍정적 명분** 축적

4. 대응 방향

가. 對 국회

▣ **국감에서 여당의 거센 비판에 대한 다양한 대응 논리 개발 필요**

- ① 일부 무죄에도 불구하고 **높은 형량은 어느 정도 유지한 재판부의 깊은 고민의 결과임**을 강조
- 특히 **양형이유**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대응에 적극 활용하여야 함
- ② 판결 내용이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비판의 확대·증폭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처**
- 다만, 현재와의 관계, 재판소원·한정위헌 결정 등의 이슈 등을 고려할 때 **표현과 내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현재가 법원의 판결에 기속되



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음을 설명하여 양 기관의 독립성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절차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름을 강조하여야 할 것임

- 즉, 법원의 형사재판절차와 현재의 위헌정당해산심판절차는 여러 가지 면
에서 준별되는 것임을 강조

☑ **답변 假案**

☞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내려진 결론에 헌법재판소가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겠으나, 유죄에 관한 고도의 확신을 요하는 형사재판과 민사소송법
을 준용하는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절차적으로 상당히 다르므로, 법원의 재
판 결과가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 對 헌법재판소

▣ 위와 같은 현재의 시도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정치권·언론기관을 상대로 형사재판과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차이점
을 강조·설명
- 현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야 함

▣ 대법원의 기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존의 노력 계속**

- 既 보고된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세적 대응 전략 검토’ 참조. 끝.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8. 7. 31.

기획조정실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2018. 7. 31.

기획조정실

■ BH

- 국정 단절을 막기 위해 진상 규명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 기능은 하루속히 회복

■ 조선일보 입장

이제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이 시간 이후로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그 분명한 행동으로 여당을 탈당해야 한다. 내년 대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버리고 중립적 관리 역할로 남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지금 모습으로 대선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허망한 일이다.

지금 우리 헌법 체계와 현실에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외에 안보 문제를 지휘할 구심점이 있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남은 1년간 북핵 위기 대처에만 전념하는 것이 옳다. 박 대통령이 최소한의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고 임기를 끝낼 수 있는 길은 이 것밖에 없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은 당장 전원 사퇴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몰락은 그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만 용기 있는 참모가 몇 명만 있었어도 이렇게 처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잘못된 길로 가는 대통령 편에 서서 국민을 우롱한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야당은 내각 총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에서 정부 각료 전부가 사퇴하고 다시 청문회를 통해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금 내각의 무능을 따질 계체가 아니다. 박 대통령은 내각 전면 개편 대신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국(擧國) 총리를 임명해 남은 1년간 경제와 내정(內政)을 맡겨야 한다. 남은 1년에 무슨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없다. 나라를 거덜낼 수 있는 조선 산업 부실 사태와 공중 분해된 해운 산업 문제 등 구조조정 현안, 대형 부실이 예상되는 주요 업종 정책, 심상치 않은 부동산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거국 총리 임명 때 야당의 뜻을 물어 핵심 경제 대책에 야당의 협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야당도 지금 정치적 이익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도한 정략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 개헌 논의 필요 ⇨ 개헌 시점은 대선 후

1987년처럼 6월 말에 헌법을 바꾸기로 하고 대선에 나서려는 사람들이 몇 달 만에 야합해 12월에 대선을 치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엔 거꾸로 내년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감을 부여해 공약하고 대선 이후 바로 개헌을 실현해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이다.

그러나 개헌 논의는 바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나서면 개헌 논의 자체가 정쟁화되기 십상이다. 이제 대통령이 뒤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된 만큼 현실적 여건은 오히려 좋아졌다고도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통일 이후까지 내다보는 개헌을 준비해갈 수 있다.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한다. 하지만 개헌 논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이 답답한 현실을 모두 쏟아붓는 용광로로 만들 수 있다. 정당은 물론 지자체, 경제단체, 시민단체, 학계가 큰 솔에 뛰어들어 통일·기본권·환경 등 근본적인 것들 말고도 기소독점권(검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차제에 선거구 제도도 바꿀지 모든 현안을 두루 다룰 필요가 있다. 권력 구조는 이런 논의와 함께 가야 하지 미리 정답을 정해둘 필요가 없다.

최○○ 사태는 그것대로 수습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벌어진 일을 정리하는 것이다. 내년 대선까지 남은 길지 않은 14개월 동안 나라 전체가 나서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을 대선 주자들에게 맡기고, 대선 후에 한 사람 뜻에 그 모든 것을 넘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친박 해체

- 지금 가장 먼저 정치적으로 탄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친박이다. 친박 스스로가 대통령에게 탈당(脫黨)을 요구하고 정치 집단으로서 문(門)을 닫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

- 검찰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수사권 행사가 아무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만큼은 검찰 직무 유기의 배경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26일 최○○ 특검(特檢)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역사적 특검은 검찰 수뇌부를 수사해 직무 유기가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를 밝혀내 범죄가 입증되면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특검이 검찰을 바꾼다.



-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되어야 함
 -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수사받지 않으면 이 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과 검찰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 대북 안보
 - 한국 손을 떠난 북핵(北核)은 미·북 대화 자리에서 설왕설래(說往說來)되고 있다.
 - 북이 또 한 차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탄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한다면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선이 9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위중한 상황에 우리 대통령은 식물 상태로 전략하고 국정은 마비됐다. 북의 김정은 집단은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전략적 도발이 아니더라도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 도발로 우리 사회를 완전히 흔들어놓을 수도 있다.
 - 며칠 전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이 "북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했다. 충격적인 말이다. 그의 말대로 미국이 북핵 폐기를 포기하고 북한과 핵 동결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이 제재와 압박에 의한 북핵 폐기를 포기한다는 뜻은 직접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이든 위기다. 지금 믿을 것은 우리 군(軍)밖에 없다. 비록 국정은 무너졌지만 장병들만은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 정부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나라와 국민을 지켜주기를 당부한다.
- 탄핵, 하야
 - 탄핵과 하야(下野)는 해법이 못 된다. 탄핵·하야 상황에선 현행 헌법으로 60일 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다시 현행 헌법의 굴(窟) 안으로 들어갈 순 없다.



● 총리 ⇨ 개헌

- 거국(學國)중립내각 구성은 시간이 지체된다. 총리부터 먼저 세워야 한다. 새 총리에겐 경제사령탑과 안보외교사령탑을 붙여줘야 한다. 지명(指名)이 아니라 옹립(擁立)된 새 총리·경제사령탑·안보사령탑에게 수습(修習) 기간을 허용할 만한 형편이 못 된다. 헌정(憲政)·경제·안보 위기에 즉각 대처해야 한다. 그러려면 구관(舊官) 중에서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새 총리는 엄정한 의혹 수사로 국민 분노와 허탈감을 다독이며 국회를 상대로 개헌(改憲) 작업을 이끌어야 한다. 3당 대표는 이 안(案)을 들고 대통령을 만나 답(答)을 얻어야 한다. 나라 운명이 걸렸다. 서두르라, 시간이 없다.

● 검찰 개혁

- 개헌으로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배제

● 특검 촉구

그런데 특검 형태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에 정해진 상설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특검을 하자고 맞서고 있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에게 선택권이 있고 별도 특검은 대통령 선택권을 사실상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그런 대통령이 특검을 누구로 할지 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별도 특검을 도입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야당이 갑자기 특검 협상을 깬 것은 시간을 끌어 나쁠 것이 없다는 정략적 발상 때문일 것이다. 국가 혼란이 이어지든 말든 즐기면 내년 대선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 태도는 곧 역풍을 맞는다. 특검은 즉각 도입할 수 있는 상설 특검으로 가고 특검 추천권은 야권이 전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합의해야 한다.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 진정성을 갖고 위기 극복에 나서는 측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결국 최○○ 관련 수사 일체를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 특별검사법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가 특검 수사를 의결하도록 돼 있다.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여야가 서둘러 특검 수사를 의결해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관계, 최씨 국정 농단 전모, 최씨 외 국정을 쥐락펴락한 집단 면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의 진짜 목적, 최씨 등의 재단 사유화 실태 등 모든 비정상을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이 정부 들어 검찰이 벌인 대통령 하명(下命) 수사 배경과 과정도 밝힐 필요가 있다.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대통령이 밖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다 이런 말로를 맞는 것은 수족(手足)처럼 움직여주는 검찰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행동을 삼가도록 하려면 대통령과 검찰의 유착을 끊어야 한다. 특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번 특검 수사는 다음 정부와 검찰에 교훈이 돼야 한다. 수사 결과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면 박 대통령은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최○○에게 갈취당한 기업들, 숨지 말고 진실 밝히라
- 가장 먼저 박 대통령 자신이 국기 문란의 총책임자라는 명백한 사실과 최○○·최○○ 일족(一族)과의 40년 관계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 해야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최○○ 사태 위에 하야라는 대폭풍이 겹쳐지고 다시 또 그 위에 당내 경선과 여야 정권 싸움이 겹쳐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실제 하야가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될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 하야 ⇨ 당내 경선 ⇨ 여야 정권 싸움 대혼란
-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존재 의미가 없어진 친박도 해산시켜야 한다
- 박관용·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 같은 여권의 원로들은 대통령의 완전한 2선 후퇴를 요구했다. 2선 후퇴라면 국내 정치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보수 정당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이만큼 키워왔다.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첫 단추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친박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이다.** 비박(非朴)은 세력 화해 있지 않지만 그들 역시 집단화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 거국내각·과도내각 등 구체적 결정권도 국회에 넘길 수밖에 없다.



- 하야는 끝까지 피해야 할 선택이고 그야말로 막다른 최후의 골목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 ⇨ 하야는 이 모든 헌법 수단이 무위가 됐을 때만 고려될 수단
- 대통령이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야권이 동의하는 책임 총리가 등장
- 진행 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직무는 정지되고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가야 함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불가피 ⇨ BH 방문 대면조사 불가피
- 그 전에 근본적인 정국 수습책 제시 필요

11. 4.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참담한 일이다. 수사 이후 대통령의 위법 혐의가 발표되면 사태는 또 다른 국면으로 가게 된다. 그 전에 근본적인 정국 수습책이 제시되기를 바랄 뿐이다.

- 여야 영수회담 개최
- 김병준 내정자 총리 지명 철회 ⇨ 국회에 새 총리 추천 요청
-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병준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새 총리 추천을 요청
-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현실 정치에 관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함
- 친박 용퇴 ⇨ 새누리당 당지도부 교체
- 경제 권력에 대한 옹호 ⇨ 조○○ 한진그룹 회장, CJ 이○○ 부회장
- 직권남용 해당하는 범죄행위 ⇨ 수석비서관과 관계자 수사 필요
- 개헌필요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대통령 잔혹사는 끝나지 않는다. 대권을

분산하지 않으면 승자 독식과 패자 원한의 복수극도 끝나지 않는다. 개헌해야 한다. 개헌을 빨리하면 현 대통령 임기를 자연스레 단축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개헌은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만 하면 두 달 안에 국민투표까지 모든 절차를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 후에 새 헌법으로 바로 대선을 치르면 수개월 내에 새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다. **1987년 개헌 때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어느 정도 단축된 전례**가 있다. 식물 대통령에 의한 국정 마비도 조기에 수습할 수 있고, 수명 다한 권력 구조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개헌안의 내용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 다 소용없어진다. 지금 정치권에선 대통령 중임제부터 내각제까지 사이에 여러 안(案)에 대한 신봉자들이 나뉘어 있다. 모두 장단점이 있어서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중임제나 내각제 등이 현 5년 단임제보다 낫다고 확언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따라서 지금의 틀을 크게 손대지 않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헌**으로 가는 것이 옳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핵심은 **실질 권한을 가진 총리제도와 함께 대통령과 검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여야 사이의 원한은 검찰 때문에 쌓인 것이 크다.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 권력은 별도로 제한하고 견제**해야 한다.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면 여야 합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나라가 변모하고 정치가 바뀌는 일정표가 국민 눈에 선명히 보이면 해야 주장도 수그러든다. 막혔던 국가의 혈류도 다시 돌게 된다. 새 정부가 가급적 빨리 그러나 불행한 사태 없이 등장할 것이 확정되고,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여야가 그렇게 죽도록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새 제도가 동시에 시작된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도 있다. 전화위복이다.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총리가 주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그 총리는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김종인·손학규 두 사람이 먼저 눈에 띈다.** 정치를 모르는 명망가는 이 일을 해낼 수 없다. 누가 총리가 되든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을 버리고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개헌을 완수했으면 한다.

대선 레이스에서 앞서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의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본다. 대통령 권력 분산은 문 전 대표의 평소 소신과 다르지 않다. 그가 이 혼란을 빨리 끝내는 데 반대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대선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문 전 대표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

■ 대미관계

- 미국에선 한·미동맹을 장식품처럼 여기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 지지율이

민주당 클린턴 후보를 1~4%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

- 트럼프는 그동안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을 강력 시사
- 오는 8일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동맹이 어떤 형태로든 조정될 수 있지만 그를 맞상대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사실상 '부재(不在)' 상태
- 북한의 김정은이 이 시기에 복합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6차 핵실험, 9차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사이버 테러'로 우리 사회를 교란할 수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처럼 범인을 즉각 알 수 없는 도발을 벌일 경우 우리 사회는 국정 마비에 남남(南南) 갈등이 겹쳐지게 된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쟁을 피해야겠지만, 전쟁을 해야만 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 군 통수권자가 기능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매일같이 가동할 필요가 있다.

■ 야당 입장

- 야당의 계산은 알기 어렵지 않다. 야당도 참여하는 거국 내각이 전면에 나서면 일단 혼돈 정국이 전환된다. 그걸 원치 않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거국 내각이면 야당도 국정 책임을 나눠 져야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이 어려운 시국을 책임지고 헤쳐가는 데 발을 담그기 싫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혼돈을 즐기면 된다는 게 속마음인 것 같다.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물러나라"고 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입에서 나온 첫 해야 요구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즉각 하야, 퇴진해야 된다는 민심에 공감한다"며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저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하야 쪽에 무게를 실었다.
-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면서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겠다. 평화 집회에 모든 행정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 인사권 요구

- 책임총리
- 내각총사퇴
- 검찰총장 퇴진

■ 검찰수사결과

-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사태는 건잡을 수 없다.

■ 특검, 하야

- 국민들의 단일한 요구 ⇨ 현재의 대통령이 부끄럽다. 대통령 하야
- 보수, 진보, 여야의 문제는 아님 ⇨ 박근혜 개인의 궤멸에 불과
- 박근혜의 식물대통령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

■ 변수

-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력”, “부도덕성” 하나에만 집중해서 나가야 함
 - 제반 정치세력들이 각종 정치적, 이념적 이슈들을 끼워 넣을수록 국민들은 이탈 ⇨ 여당은 역으로 이 부분을 이용해야 함
 - 11. 5. 시위 현장에는 “청와대 박살내자”, “이○○ 처단하자”, “삼성을 박살내자”와 같은 구호가 등장했다고 함 ⇨ 국민들의 좌파 정치에 대한 혐오 및 시위 대열 이탈을 조장할 가능성 다분함



- 국민들은
- 국민들의 분노를 결집하여 이끌어 나갈 핵심 주체가 없는 상황
- 재야 세력, 정의당, 노동조합 ⇨ 지나치게 급진적
- 제도권 정치 내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선블리 장외정치에 함께 하기는 어려운 상황 ⇨ 역풍 우려

■ 대법원의 전략

- 대한민국 중도층의 기본적인 스탠스 ⇨ “정치는 진보, 경제/노동은 보수”
-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함 ⇨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서는 계속하여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함
 -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는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었음
 - 백○○ 부검 영장
- 단, 대북문제에서는 보수적인 스탠스 유지
- 경제, 노동의 문제에서는 보수적 스탠스 유지

■ 사태의 분수령이 되는 시점 ⇨ 11. 12. “박근혜 퇴진 민중 총궐기”

- 11. 12.은 통상 가장 큰 집회 ⇨ 백○○ 농민 사태 발생일
- 민주당은 이같은 요구조건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마지노선을 오는 12일 광화문에서 진행될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촛불집회로 보고 있다. 다음주 안에 박 대통령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추 대표는 “먼저 이 요구가 수용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기는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 추 대표는 “지금은 수습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한 때”라며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향후 방침에 대한 중론을 모은 추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내놨다. 그는 “첫째,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제와 국조조사를 즉각 받아들이고 박 대통령은 그 수사에 응하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 유지용 일방적 총리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저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68815.html#csidxe62a3eb190737e180e7c974008c6bd6>

■ 황○○ 감사원장

- 2017. 12. 대선직전 임기 만료

■ 야권은 헌재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절차 관여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 높음

- 헌법재판관

出身 母體	재판관	임기 만료	2017. 1 기준 잔여임기	비고
BH	박○○	2017. 1.		
	서○○	2019. 3.	2년 2개월	
	조○○	2019. 3.	2년 2개월	
국회	안○○	2018. 9	1년 8개월	여당
	강○○	2018. 9.	1년 8개월	여야 합의
	김○○	2018. 8.	1년 7개월	야당
CJ	이○○	2017. 3.	2개월	
	김○○	2018. 8.	1년 7개월	
	이○○	2018. 8.	1년 7개월	

■ 대법관

- 이○○, 박○○ 대법관
- 양승태 대법원장



▣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사임서는 누구에게 제출?

▣ 4. 19. 혁명 당시 헌법 (3차 헌법, 1954. 11. 29.)

第55條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但, 再選에 依하여 1次重任할 수 있다.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副統領이 大統領이 되고 殘任期間中 在任한다. 副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即時 그 後任者를 選舉하되 殘任期間中 在任한다. 大統領, 副統領이 모두 闕位된 때에는 第52條에 依한 法律이 規定한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이 大統領의 權限을 代行하되 闕位된 날로부터 3個月 以內에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舉하여야 한다.

第56條

① 大統領, 副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任期가 滿了되기 30日前에 그 後任者를 選舉한다.

▣ 하야의 한미관계 영향

- 이승만정부의 유지와 이승만의 사임에는 미합중국의 대한정책이 깊이 작용하였다. 1952년과 1953년에 미합중국정부에 의해 극비리에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1960년 4월 27일의 사임에도 주한 미합중국 대사와 주한 미군사령관과 미합중국 중앙정보국 한국책임자까지 깊이 개입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 "4월혁명, 제 2공화국, 그리고 한미관계," 백○○(편), 「제 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서울: 나남출판, 1996), 77쪽 이하(특히 88-90쪽) 참조. 1)

▣ 4. 19. 혁명

- 4. 27. 사임 ⇨ 4. 28. 허정 과도정부 구성 ⇨ 개헌 착수 ⇨ 1960. 6. 15. 헌법 공포, 시행 ⇨ 1960. 7. 29. 총선 ⇨ 8. 12. 대통령 선출 ⇨ 8. 19. 총리 선출
- 당시 헌법 제55조의 성격은 훈시규정?

1) 대통령 권한의 대행제도 | 저자 정○○ | 출판사 | 발행년 2001 | 유형 논문 > 문헌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 종합법률정보 문헌) 각주1



- 개헌을 하게 되면 절차적 하자는 모두 치유?

● [착안사항] 대통령 하야 ⇨ 거국중립내각 구성 ⇨ 개헌 ⇨ 대통령 선거

■ 이승만 대통령

-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 2. 3·15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겠다.
- 3. 선거로 인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붕 의 장에게 모든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 4.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 국회 결의

-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성명이 나오자 이날 오후 국회는 ‘시국 수습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①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하야한다 ② 3·15 정부통령 선거는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③ 과도내각하에 완전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한다 ④ 개헌 통과 후 민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즉시 실시한다”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68828.html#csidxe0a586cfc06353288adb70e6f5f167b>

■ 사고로 직무수행 불가능

- 장기간 해외 체류 + 권한 대행

2. 정치권의 동향

가. 現況

■ ① 새누리당 ⇨ 최○○ 게이트라는 최악의 악재로 뒤덮인 상황에서 개헌 논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 중

- 정진석 원내대표 ⇨ 10. 27.(목) 기자간담회에서 “최○○ 비리 의혹 재발을 막는 확실한 방법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손보는 것”이라면서 최○○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개헌을 제안

- 정진석 대표의 주장을 메이저 언론은 팩트 기사로 처리하는 반면, 일부 군소언론(경북도민일보, 시민일보)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 ⇨ 친박 세력의 개헌 관련 공보 전략이 가동 중임을 알 수 있음
- 정진석 원내대표는 수세에 몰려 있는 BH 및 친박 세력과의 교감 하에 개헌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는 작업을 수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음

☑ 정진석 원내대표의 주장을 지지하는 일부 군소언론

▶ 10. 28.자 경북도민일보 “최○○ 때문에 개헌 않겠다고?”

- 박 대통령의 개헌론이 순수하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 그렇다고 '개헌'을 요구해온 야당이 '최○○ 개헌'은 못하겠다고 뒤로 빠지는 것은 잘못이다. 이럴 때 일수록 최○○같은 비선이 설치지 못하도록 하는 권력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 10. 28.자 시민일보, “문재인은 분권형 개헌에 동의하라”

- 문 전 대표는 2014년 10월20일 국회 개헌논의에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난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국회의원이 헌법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누구도 못하게 막을 수 없다"고 핏대를 올렸다. 그런데 왜 지금은 반대를 하는가. 최○○ 의혹 진상규명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그런 문제로 모든 개헌논의를 중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실제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문재인 전 대표가 고립되는 반면 개헌론에 불을 지핀 손학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제3지대'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 의혹을 핑계로 개헌논의 자체를 차단해 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혹시 현재 야권 대선주자들 가운데 자신의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을 한 번 해보겠다는 욕심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② 민주당 ⇨ '개헌논의 반대'(주류) VS '개헌논의 진행'(비주류)

- [주류] ☞ ① **최○○ 사태 해결 前 개헌 논의 절대 불가**, ② 대통령 주도 개헌 반대
- [비주류] ☞ **최○○ 사태와 별개로 개헌 논의 가능**

☑ 연합뉴스(10. 25.), “민주, 박근혜표 개헌 반대... 개헌특위 논의 참여도 미룰 듯”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분간 개헌특위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래 개헌특위는 정기국회 이후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합의가 돼 있었다. 대통령이 하자고 해서 바로 해줄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개헌논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아래로부터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3] 국민의당

- 개헌특위 구성을 비롯한 **개헌논의에는 일단 참여하겠다는 입장**
 - 단, 안철수 의원은 “개헌 논의는 종료되었다”고 발언

☑ 연합뉴스(10. 25.), “민주, 박근혜표 개헌 반대... 개헌특위 논의 참여도 미룰 듯”
국민의당은 이번 개헌에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는 비판에는 민주당과 입을 모으면서도 **일단 개헌논의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다, 박 대통령 주도 개헌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정세균 국회의장과도 논의했다. 일단 국회에서의 개헌논의에 참여를 하겠다**”면서도 “그동안 나온 개헌안만도 국회에 한 트럭이 있고, 각자 생각하는 방안이 다르다.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 分析과 展望

▣ 정부주도형 개헌 동력 상실 ⇨ 국회주도형 개헌으로 중심 이동

- 대통령의 개헌 추진 선언이 있었던 이상 정부 내에 개헌 준비 조직을 만들겠지만 정부가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는 없는 상황
- **BH 및 친박 세력**은 당초 구상했던 정부안을 국회 개헌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

▣ ① 최○○ 특검안 및 ② 예산안이 통과되면 개헌 특위 구성될 것임

- 더민주당 주류(친노)가 논의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 ⇨ **최○○ 특검안 및 예산안 통과 없이는 개헌 특위 구성될 수 없음**
 - 더민주당 지도부를 친노가 장악하고 있는 이상, 더민주당 비주류 세력의 개헌 주장은 개헌특위 구성에 영향력 없음
 - 정세균 의장은 친노의 지지를 받고 의장에 선출되었음 ⇨ 친노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으로 개헌 특위 구성의 드라이브를 걸 수 없음
 - ▣ 우윤근 사무총장 또한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
- 친노 세력 또한 끝까지 개헌 논의 동참을 거부할 명분은 없는 상황 ⇨ 결국, **최○○ 특검안 및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또는 1월에 개헌 특위가 구성될 것임**
 - 다만, 막상 개헌특위에 참여한 뒤에는 ‘포괄적 개헌’, ‘국민적 합의’, ‘선거제도 개편과 동시 진행’ 등을 주장하면서 개헌에 사실상 반대할 것임

☑ 연합뉴스(10. 25.), “민주, 박근혜표 개헌 반대... 개헌특위 논의 참여도 미룰 듯”

민주당은 개헌논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아래로부터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논의에서 빠지시라. 국회와 여야정당이 개헌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며 "이런 원칙에 따라 **개헌연구 자문회의**를 구성,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하고 당내에서도 중진들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계속 제기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표와 당 지도부는 개헌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언제까지고 개헌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개헌론이 계속 거론될 경우 당내 원심력이 작용하며 제3지대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친노 세력의 개헌 논의 구상** ⇨ ① 포괄적 개헌, ② 범국민적 논의, ③ 선거제도 개편과 병행, ④ 당내 개헌연구 자문회의 구성

● **10. 25.자 추미애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 **친노 세력의 개헌에 대한 구상**을 알 수 있음

- [개헌의 범위]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된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포괄적 개헌**
 - ▣ “인권, 안전, 환경, 지방분권, 국민행복 등의 가치를 담은 미래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 [개헌의 속도] 국회 중심의 신속한 개헌이 아닌 **범국민적 논의를 거치는 느리더라도 신중한 개헌**
 - ▣ “국민중심으로 민주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국민중심개헌, 민주적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 [동시 추진 과제] 개헌만이 아닌 **선거제도 개편도 동시 추진**
 - ▣ “개헌이 진정한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표의 등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구제 개혁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 [추진계획] **당내 개헌연구 자문회의** 구성 + **국민주권개헌 대토론회** 개최

☑ **추미애 대표 기자회견문(10. 25.), “국민주권개헌의 4대원칙”**

저는 개헌논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주권개헌의 4대원칙을 밝힙니다. 우리 당과 우리 당의 주요한 지도자들은 그간 다양한 각도에서 개헌문제를 검토해왔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향후 개헌논의에 접근하는 원칙으로 다음 네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중심으로 민주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국민중심개헌, 민주적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가대계를 위한 개헌이 한 정권의 위기모면과 정권연장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기말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논의에서 빠지십시오. 국정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회와 여야정당이 개헌논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개헌이 진정한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표의 증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구제 개혁**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넷째, **인권, 안전, 환경, 지방분권, 국민행복 등의 가치를 담은 미래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4대 원칙 아래 **당내에 개헌연구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국회에서의 질서 있는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개헌 관련 더민주당의 핵심 브레인 ⇨ 전해철 의원(재선)**

- 친노 세력은 더민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회를 모두 장악
- ⇨ 더민주당의 개헌 구상은 **친노, 그 중에서도 친문 핵심이 좌우**
- 문재인 의 최측근 ⇨ 3철, 5문
- [3철] 이호철(전 민정수석), 양정철(전 홍보비서관), **전해철(전 민정수석)**

☑ 일요신문(5. 30.), “문재인 최측근 문고리 삼철 뭐하나 봤더니”

▶ 4·13 총선을 거치면서 삼철의 행보도 희비 곡선을 그렸다.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 상록갑)은 20대 총선에서 ‘일여다야’를 극복하고 재선 고지에 올랐다. 친노(친노무현)계에서 친문(친문재인)계로 좁아진 더민주 주류 세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것이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 세월호 진상규명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제2 소위원장 등을 맡으며 정책 행보에 매진했다. 친문계 실세라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비춰졌다. 앞서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노계 좌장인 이해찬 의원이 낙천하자 당 안팎에선 **“친노계를 죽이는 대신 친문 핵심을 살렸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양정철 전 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다.

▶ 본격적인 차기 대선판이 열린다면 이들 3인방의 행보 역시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문 전 대표의 ‘1m 그룹’이다. 당내 범주류 인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문 전 대표에게 이들 3인방은 ‘천군만마’다. 그러나 동시에 딜레마다. 문 전 대표의 대권 탈환을 위한 제1 조건은 ‘친노(친노무현) 이미지’ 지우기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차기 대선 고지 선점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 월간조선(10. 5.), “문재인의 브레인이 바뀐다”

▶ 삼철 중 **전해철 의원은** 재선에 성공하고 **당 최고위원에 당선**되면서 문 전 대표의 측근 역할보다는 자신의 당내 입지를 굳혀갈 것으로 보인다.



- [5문] 최재성, 진성준, 정청래, 최민희, 김현 前 의원
 - 추미애 당대표, 김영주 서울시 당위원장 선거에서 친문 세력을 대변하면서 당권 장악에 기여 ☞ 현재 당직 맡지 않고 2017년 대선 준비 중

☑ 월간조선(10. 5.), “문재인의 브레인이 바뀐다”

▶ 신친문 오인방의 출신 계파는 각각 다르다. **최재성 전 의원**은 정세균계, **진성준 전 의원**은 김근태계, **정청래 전 의원**은 정동영계로 불렸다. **최민희 전 의원**은 시민단체 출신 비례대표였고 **김현 전 의원**은 야당 당직자 출신으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다. 이들이 한뜻으로 뭉친 것은 ‘**문재인 대세론**’을 만들기 위해서다. **추미애 캠프에서 뭉쳤지만 실제 목적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추미애 대표는 승리의 주역인 이들 중 일부를 주요 당직에 임명하고자 했지만 당사자들이 사양했다. 대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 “전해철 의원”은 **향후 개헌 정국에서 더민주당을 이끌어 나갈 브레인**으로 활약할 것임 ⇨ 친문 핵심인 3철 중 하나이면서, 재선에 성공하고,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변호사 출신으로 당내에서도 스마트하고 전략적 사고에 능하며 전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박범계 의원은 개헌 특위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으나 전해철 의원에 비하면 당내 위상 및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
 - 박범계 의원의 경우 친노에서 존재감이 약하고, 박영선 의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가 존재

☐ **개헌 관련 더민주당의 상징적 인물 ⇨ 원혜영(5선)**

- 원혜영 의원은 범 친노 그룹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계파색이 없고, 당내 위상 및 영향력이 큼 ⇨ **개헌 특위에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

☐ **더민주당에서 개헌 특위 참여가 유력한 의원**

- [친노계] 원혜영, 전해철, 박범계, 금태섭
- [손학규계] 이춘석, [정세균계] 백재현, [기타] 이석현

⇒ [착안사항] 더민주당 내 법조인 출신 의원 명단 작성 및 사전 접촉 필요

<더불어민주당 계파 분석(2016. 4. 기준)>

범친노 55명(44.7%)	친노 (26명)	홍익표, 강병원, 황 희, 신경민, 진선미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김해영, 윤관석, 박범계 조승래 , 문희상, 김경협, 원혜영, 정재호 , 윤호중 권칠승, 이학영, 윤후덕, 김종민 , 김경수, 박남춘 김태년, 남인순 (서영교)
	친문 (18명)	추미애, 박주민, 손혜원, 금태섭, 김병기, 홍영표 김병관, 전해철, 조웅천, 김정우, 표창원, 도종환 서형수, 문미옥, 이철희, 제윤경, 권미혁, 정춘숙
	정세균계 (11명)	정세균, 안규백, 김영주, 박병석, 백혜련, 김영진 김진표, 김상희, 백재현, 김철민, 이원욱
86그룹 19명(15.4%)	박홍근, 유승희, 기동민, 인재근, 우원식, 이상호, 이인영, 김영춘 박찬대, 유동수, 송영길, 설 훈, 유은혜, 김현미, 조정식, 박완주 어기구, 이재정, 김현권	
비노 28명(22.7%)	전혜숙, 민병두, 고용진, 김영호, 노웅래, 박영선, 이 훈, 전현희 김부겸, 이상민, 이찬열, 김병욱, 이종걸, 이언주, 정성호, 김한정 안민석, 김민기, 김두관, 소병훈, 오제세, 변재일, 강훈식, 이춘석 안호영, 이개호, 강창일, 위성곤	
기타 21명(17.0%)	진 영, 박용진, 한정애, 최명길, 심재권, 신동근, 박광온, 이석현 신창현, 박 정, 임종성, 송기현, 양승조, 민홍철, 오영훈, 박경미 김종인, 송옥주, 최윤열, 김성수, 이용득	

☞ 청색 : 안희정계



3. 국회 내 개헌 논의 기구의 조직 형태

가. 가능한 논의 기구의 형태

- ① 개헌 특위 ⇨ 가장 유력
- ②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 (외부전문가만 참여) ⇨ 가능성 없음
- ③ 중간 형태 의장 직속 기구 “개헌추진위원회” (의원 + 외부전문가)

나. [①안] 개헌 특위 ⇨ 가장 유력

▣ 개헌특위 설치에는 본회의 의결 필요

☑ 국회법 제44조(特別委員會)

- ① 國會는 數個의 常任委員會所管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案件을 효율적으로 審査하기 위하여 本會議의 議決로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委員會를 구성할 때에는 그 活動期限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本會議의 議決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헌특위 의원수 ⇨ 특별한 제한 없으나 30인 이상 50인 이하로 예상

-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나(국회법 제38조), 특별 위원회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 없음
- 다만, 개헌특위 위원수는 최소 30명 이상 최대 50명 이하로 예상됨
 - ① 안건의 중요성(개헌)에 비추어 볼 때 최소 30명 이상 참여 예상
 - ② 예결특위 위원수가 50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논의의 효율성을 위한 최대 인원수는 50명임

☑ 1987년 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 사례

- ▶ 1986. 7. 29. 구성 완료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45인이었음
 - 민주정의당 23명, 신한민주당 17명, 한국국민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 특위위원은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 의장이 선임, 위원장은 호선

- 위원수는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

☑ **국회법**

제47조(特別委員會의 委員長)

① 特別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두되 委員會에서 互選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제48조(委員의 選任 및 改選)

① 常任委員은 交渉團體所屬議員數의 比率에 의하여 각 交渉團體代表議員의 요청으로 議長이 選任 및 改選한다.

② 어느 交渉團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議員의 常任委員選任은 議長이 이를 행한다.

④ 特別委員會의 委員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議長이 常任委員중에서 選任한다. 이 경우 그 選任은 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이 本會議에서 議決된 날부터 5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특위 산하에 분과별 소위 구성할 것임

- 가능한 방안

- [1안] ① 권력구조 + ② 기본권 및 법원/헌재
- [2안] ① 권력구조 + ② 기본권 + ③ 법원/헌재/선관위/감사원 등

- 검토의견

- 권력구조 소위는 정부형태(대통령제/의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 논의에 집중하여야 하므로, 법원/헌재는 별도의 소위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됨

- 착안사항

- 개헌특위 구성(위원장, 간사, 위원) 뿐만 아니라, 법원/헌재 관련 소위의 구성에 대하여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임명은 의장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

☑ **국회법**

제42조(專門委員과 公務員)

① 委員會에 委員長 및 委員의 立法活動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議員 아닌 專門知識을

가진 **위원(이하 "專門委員"이라 한다)**과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委員會에 두는 專門委員과 公務員은 國會事務處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專門委員**은 **事務總長의 提請**으로 **議長이 任命**한다.
- ④ 專門委員은 委員會에서 議案과 請願등의 審査, 國政監查, 國政調査 기타 所管事項과 관련하여 檢討報告 및 關聯資料의 蒐集·調査·研究를 행한다.
- ⑤ 專門委員은 제4항의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委員長의 許可를 얻어 委員長名義로 하여야 한다.
- ⑥ 專門委員은 委員會에서 發言할 수 있으며 本會議에서는 本會議議決 또는 議長의 許可를 받아 發言할 수 있다.

● 임명 방법

- 전문위원 ⇨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국회법 제42조 제1항)
 - **강○○ 전문위원의 특위 투입을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 설득 필요**
- 입법조사관 ⇨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명

● 겸임 여부

-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은 **소속 위원회 업무와 개헌특위 업무를 겸임함**

● 인원

- 전문위원의 수는 **최소 4명 이상**이 될 것임
 - 2013년 사개특위의 전문위원은 총 4명이었음(사개특위 위원은 총 18명)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입법조사관은 **최소 20명 이상**이 될 것임
 - 2013년 사개특위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입법조사관은 총 17명이었음

● 관례를 고려할 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실**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함

- 통상 사개특위, 정개특위 등이 구성될 때에는 **소관 상임위의 수석전문위원과 소속 입법조사관이 해당 특위에 투입되는 것이 관행임**



- 다만, 개헌특위는 소관 상임위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및 소속 입법조사관이 투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 ⇨ 강○○ 전문위원의 특위 투입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됨

● 입법차장, 사무차장과 같은 최고위급 국회공무원도 형식상으로는 ‘전문위원’ 자격으로 특위 운영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음

- **전문위원급 이상의 국회 고위 공무원 명단 확보 및 사전 접촉 필요**

▣ **개헌특위에는 3인의 외부 전문가만 심사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음**

국회법

제43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議決로 중요한 案件 또는 專門知識을 요하는 案件의 審査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案件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있는 3인 이내의 專門家를 審査補助者**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門家를 審査補助者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委員長이 議長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議長은 豫算事情등을 감안하여 그 人員 또는 위촉기간등을 調整**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된 審査補助者는 國家公務員法 第33條의 結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國家公務員法 第7章 服務에 관한 規定이 準用된다.

④ 위촉된 審査補助者에 대한 手當의 支給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議長이 정한다.

● 국회법의 해석상 **3인을 초과한 심사보조자는 임명 불가**

- 단, 국회법 개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심사보조자 임명권자는 **특위위원장**으로 해석됨

● 3인의 구성 예상

- [1안] 헌법학 1인, 행정법학 1인, 정치학 1인

- [2안] 헌법학 2인, 정치학 1인

- [3안] 헌법학 1인, 정치학 1인, 기타 학문(사회학, 경제학 등) 1인



● 착안사항

-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심사보조자는 매우 소수에 그침 ⇨ **[1] 학계에 서의 명성, 권위와 [2] 정치적 중립성의 외관이** 선발의 필수 요건
 - ▣ **여야 합의** 없이는 심사보조자로 선발되기 어려운 조건
- **헌법학, 행정법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 각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고, 중립적인 외관을 갖춘 교수** 명단 추출 및 사전 접촉 필요
 - ▣ 주요 대학별로 헌법학, 행정법학, 정치학의 선임 교수 또는 가장 명망 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평가되는 교수 1명씩 추출 필요 ☞ (예) [서울대 헌법학의 경우] 성○○ 교수(총장), 송○○ 교수(선임)
- 다만, 각 정당별로 자문위원회가 꾸려질 것이므로, 정치적 색깔이 있는 다양한 교수들을 접촉하는 시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됨

다. [2안]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구성 (외부 전문가만 참여)

▣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 구성에 본회의 의결 필요 없음

- 국회의장이 결단하면 곧바로 구성 가능

▣ [제18대] 2008. 8. 국회의장(김형오)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구성

- 18대 자문위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위원장	김○○	전 국회의원	국회의장 추천
부위원장	성○○	서울대 교수	국회의장 추천
간사	함○○	고려대 교수	국회의장 추천(행정학)
위원	박○○	영남대 교수	한나라당 추천
	석○○	단국대 교수	민주당 추천
	오○○	아주대 교수	민주노동당 추천
	유○○	연세대 교수	창조한국당 추천(행정학)
	이○○	동아일보 논설실장	한나라당 추천
	이○○	대전대 교수	자유선진당 추천(행정학)
	장○○	고려대 교수	한나라당 추천



	장○	중앙대 교수	국회의장 추천(정치학)
	정○○	서울대 교수	한나라당 추천
	정○○	동아대 교수	한나라당 추천

● 18대 실무지원단

- 실무지원단 규모 : 단장 1, 부단장 2, 단원 39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비고
단장	법제실장	김○○	국회사무처
부단장	기획관리관	박○○	국회입법조사처
	정책기획비서관	이○○	국회의장비서실
단원	행정법제과장	임○○	국회사무처

■ [제19대] 2014. 1. 국회의장(강창희)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구성

● 19대 자문위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위원장	김○○	서울대 명예교수	국회의장 추천
	박○○	동국대 교수	국회의장 추천
	정○○	성균관대 교수	국회의장 추천
	김○○	서울시립대 교수	국회의장 추천
	이○○	서울대 교수	국회의장 추천
	이○○	전 국회의원	국회의장 추천
	송○○	전 국회의원	국회의장 추천
	안○○	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국회의장 추천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국회의장 추천
	권○○	김&장 법률사무소	새누리당 추천(사법부 비공식 추천)
	강○○	서울대 교수	새누리당 추천, 정치학
	조○○	부산대 교수	새누리당 추천
	홍○○	법)태평양	새정련 추천(사법부 비공식 추천)
	김○○	전남대 교수	새정련 추천
	김○	오마이뉴스 기자	새정련 추천

● 19대 실무지원단

- 실무지원단 규모 : 단장 1, 부단장 2, 단원 28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비고
단장	법제실장	남○○	
부단장	경제법제심의관	김○○	
	정치행정조사심의관	이○○	국회입법조사처
단원	법제총괄과장	김○○	회의준비 총괄
	기획예산 담당관	이○○	기획조정실
	법제연구과장	연○○	회의자료 총괄

■ 검토의견

-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제18대, 제19대 국회에서 이미 구성하였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다시 구성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만일 개헌특위 구성이 무산되더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서 “국회의원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아래와 같은 “개헌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임

라. [3]안 중간 형태 의장 직속 기구 “개헌추진위원회”(의원 + 외부전문가)

■ 외부전문가 이외에 의원들도 참여하되, 의장 직속 기구로 하는 방안

- 지난 6월 우상호, 박지원 원내대표의 제안이 있었음

☑ 연합뉴스(6. 16.), “국회 개헌특위 설치될까...여야 엇갈린 3당 3색 반응”

▶ 우 원내대표는 “특위의 형태가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해 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을 전제로 “의원들이 들어가되 의장 직속 기구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 전 의원의 제안에)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문제에 대해서 꼭 국회의원만 (참여) 할 것인가, 외부인사만 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6. 30.), 여야 “불체포특권 포기”...의장직속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

▶ 정 의장은 개헌특위 설치가 지연될 경우 징검다리 형태로 의장 직속 자문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4. 개헌대응반 구성

가. 개요

▣ 구성 방향

- 대규모 인원 구성은 불필요 ⇨ 보안 유지 어려움 + 신속한 대응 어려움
 - 기민하고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슬림화
- 신속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지법부장과 고법판사급을 팀원으로 구성
- 헌재연구관 경험이 있거나 정무적 판단과 전략적 사고에 능한 고법부장급을 2~3명 자문역으로 두어 적절한 조언자 역할을 하도록 함
- 법원 외부 전문가 참여 ⇨ 국민의 객관적 시각에서 사안을 독립적으로 바라볼 필요
- 국회 및 정부의 개헌논의기구에 참여할 인사 후보군 사전분석 ⇨ 컨택 가능한 팀원 참여 필요

▣ 조직의 개요

- ① 팀장(차장)
- ② 실무지원반장(양형실장)
- ③ 자문역 ⇨ ▲내부 자문역(상임/비상임), ▲외부 자문역
- ④ 내부팀원

나. 자문역

1) 내부자문역

▣ 내부 자문역 ⇨ 상임/비상임으로 구분

순번	구분	이름	기수	소속	비고
1	상	한○	17	서울고등	호남, 국회의장



2	임	임○○	17	서울고등	PK
3	비 상 임	김○○	16	부산고등	TK
4		문○○	18	부산가정	PK
5		이○○	22	부산고등(창원부)	법사위 전문위원
6		이○○	26	서울동부	호남, 충청
7		양○○	26	광주고등	호남
8		권○○	26	특허법원	충청
9		문○○	27	대전지법	충청, 검사 출신
10		장○○	28	남원지원	서울, BH
11		최○○	28	헌재과건	PK, 헌재
12		정○○	29	창원지법	PK
13		김○○	30	울산지법	TK, 국회
14		이○○	31	대법원	호남
15		김○○	31	서울중앙	호남
16		김○○	31	서울중앙	호남, 국회
17			장○○	33	국회과건

● ① 상임 내부 자문역 (조언자 역할)

- [목표] 헌재연구관 경험이 있거나 정무적 판단과 전략적 사고에 능한 고법 부장급 2~3명을 상임 내부 자문역으로 두어 적절한 조언자 역할을 하도록 함 ⇨ 한○, 임○○
- [역할] 실장 중심의 행정처 내부의 정책 결정에 상시 참여, 조언 제공

● ② 비상임 내부 자문역 (정보 취득)

- [역할] 접촉 대상이 되는 주요 인사와의 만남 ⇨ 정보 취득, 보고
- [주의사항] 내부 팀원이 비상임 내부 자문역과 일대일로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비상임 내부 자문역 상호간에는 서로의 존재를 몰라야 함 ⇨ 점조직으로 운영
 - 역할 부여는 “내부 팀원 ⇨ 비상임 내부 자문역”의 탐다운 방식으로 전달
 - 내부 팀원은 접촉 대상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비상임 내부



자문역에게 구체적으로 역할 부여

- 비상임 내부 자문역은 국회 과건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처에 근무하지 않고 재판 업무에 종사 ⇨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법관이 대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대외적으로 거센 비난에 직면할 우려 존재**(예: 상고법원 관련 법원장이 국회의원을 접촉한 사실이 언론에서 보도되어 문제된 사례)
- 단, 점조직으로 운영할 경우 비상임 내부 자문역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문제의식 공유 정도가 떨어질 우려 존재 ⇨ 추가 검토 필요

2) 외부 자문역

순번	이름	소속	비고
1	강○○	서울대	정치학계(새누리)
2	최○○	한림대	정치학계(더민주)
3	한○○	서울대 명예교수	사회학계, 국민의당 창당발기인
4	문○○	아리랑TV 사장	헌법학계
5	조○○	개인사무소	전 법제처, 87년 헌법 개정 관여
6	김○○	변호사	전 비서실장
7	홍○○	태평양	전 정책심의관
8	곽○○	김앤장	전 민정비서관
9	김○○	국회의원	87년 헌법 기초

- **[역할]** 개헌 대응반에 법원 외부 전문가 참여 ⇨ 국민의 객관적 시각에서 사안을 중립적으로 바라볼 필요
- **[주의사항]** 명단 유출될 경우 법원이 현재와의 관계에서 기관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정치적으로 행동한다는 치명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 높음 ⇨ **철저한 보안 유지 필요**
 - 내부 팀원이 외부 자문역과 일대일로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외부 자문역 상호간에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몰라야 함 ⇨ **점조직으로 운영**
 - 내부 팀원은 접촉 대상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외부 자문역에게



구체적 역할 수행 부탁

다. 내부 팀원

순번	이름	기수	소속	비고
1	이○○	25	법원행정처	
2	김○○	32	법원행정처	간사
3	문○○	33	법원행정처	간사
4	한○○	33	법원행정처	
5	최○○	33	법원행정처	
6	임○○	34	법원행정처	
7	이○○	27	서울고등	기조실, 국회
8	정○○	28	서울고등	정책실
9	오○○	28	사법연수원	서울고등 공보관
10	시○○	32	서울중앙	기조실

- [역할] 신속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지법부장과 고법판사급을 팀원으로 구성

5. 개헌대응반 업무 분장

가. 단계별 대응 전략

▣ [1단계] 법원/헌재 쟁점 설명 ⇨ 문제의식 생성 (Anchoring Effect)

- 대부분의 의원들은 개헌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원/헌재 관련 쟁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
 - ⇨ 이와 같은 백지상태에서는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현재의 논리가 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음
- 백지상태에 있는 의원들에게 법원/헌재 관련 개헌 쟁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설명 ⇨ ▲개헌 국면에서 법원에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유

도하거나(Anchoring Effect), ▲(그렇지 않더라도) 법원과 헌재의 주장은 장단점이 있다는 정도의 최소한의 문제의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 쟁점 설명을 통해 법원/헌재 부분은 개헌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의식 생성 유도 ⇨ 법원/헌재 부분은 개헌에서 제외

▣ [2단계] 공세적 대응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통합 필요성 강조

- 법원/헌재 관계에 대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공세적으로 대응

▣ [3단계] 헌재와의 관계 절연 ⇨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위상 절하

- 위기 국면이 도래할 경우 비법조인도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재와의 관계 절연

나. 정보 수집

▣ 국회, 청와대 등 동향 파악

- [국회] 장○○(⇨차장, 기조실장, 기획1)
 - 수시 및 정기(주1회: 개헌 관련 국회 동향 보고)
- [BH] 최○○(⇨차장, 기조실장)
- [법제처] 김○○(⇨기조실장), 김○○(⇨기획1, 2)
- [헌법재판소] 최○○(⇨양형실장, 문○○)

▣ 언론보도 체크

- [매일] 사법정책실 김○○ 실무관(⇨내부 팀원)
- [주1회] 공보관(⇨내부 팀원)
 - 인터넷 기사(일간신문 등), 주간지, 월간지
- [언론 분석 및 전망] 최○○(⇨내부 팀원)



다. 개헌 특위 구성 관련 대응

▣ 정세균 국회의장, 우윤근 사무총장

- 면담 또는 식사 ⇨ 동향 파악, 개헌 관련 사법부 논리 설명, 판사 출신 전문위원(강○○)의 특위 포함 필요성 설득
- 정세균 국회의장(⇨차장, 한○)
- 우윤근 사무총장(⇨ 차장, 기조실장, 양형실장)

▣ 개헌 특위 참여할 국회의원 파악 ⇨ 인맥지도 작성 ⇨ 접촉 담당자 지정

- 위원장 ⇨ 친분 관계 및 접촉 루트 파악
 -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5선) ⇨ 개헌특위 위원장 맡겠다는 의사 이미 피력
 - 최소 4선 이상 의원일 것 ⇨ 4선 이상 의원 전수 조사
⇨ 기획1, 기획2, 장○○
- 위원 ⇨ 새누리당, 더민주당, 정의당, 비교섭단체로 나눔
 - 각 당별 구심점 파악(새누리당: 정종섭, 더민주당: 전해철 등)
 - 개헌 특위 참여 유력한 의원 리스트 작성 ⇨ 친분관계 및 접촉 루트 파악
 - ▣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 당내 영향력, 개헌 관심도 등 고려

<개헌특위 참여 예상 의원>

정당	의원명
새누리당	정종섭, 권성동, 김도읍, 김세연, 여상규, 이군현
더민주당	전해철, 원혜영, 박범계, 금태섭, 이춘석, 백재현, 김종인, 박영선, 진영, 민홍철, 이석현
국민의당	이상돈

- 소위 구성도 고려해 보아야 함 ⇨ ① 권력구조, ② 기본권, ③ 법원/헌재
 - 권력구조편이 아닌 다른 분야의 소위(② 기본권, ③ 법원/헌재)에 참여할



의원 분석 ⇨ 소위원장, 소위위원

- 보좌관 ⇨ 위원장 및 위원의 보좌관 중 개헌 업무 담당 보좌관 파악
 - 장○○, 기획1, 기획2

▣ **개헌 특위 참여할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 파악** ⇨ **접촉 담당자 지정**

- 전문위원급 이상 국회 공무원 전수 조사
 - 헌법학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보유자
 - ⇨ 장○○, 기획1, 기획2
- 입법조사관 중 참여 유력한 인물 명단 정리
 - 헌법학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보유자
 - ⇨ 장○○, 기획1, 기획2

▣ **개헌특위 심사보조자, 각 당의 개헌자문위원회 또는 정부 개헌 기구에 참가할 전문가 발굴**

- 헌법학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편협하여 곤란하다는 여론 조성
 - ① 역사적(제2공화국 헌법 개정 등), ② 비교법적(외국 사례), ③ 논리적 논거 발굴
 - (예) 외국의 경우 헌법 개정에 정치학자들이 참여한 사례 발굴
- 현재에 특히 편향된 입장을 가진 헌법학자들은 배제시키는 전략 필요
- 폭넓은 시각을 가진 정치학자 등 참여 필요 ⇨ 후보자 물색
- 정치학자 참여의 필요성
 - 제19대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헌법학 교수(김○○)가 위원장
 - 제18대 때는 경제학자이면서 정치인인 김○○ 대표가 위원장 역임
 - 헌법학 교수들의 주된 관심사는 헌법의 규범적 해석, 사후적 규범통제 등 미시적인 헌법해석학에 맞추어져 있음

- ⇨ 그러나 현재의 헌법개정은 ‘제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한 상황(‘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대한 프로젝트’)
- ⇨ 다양한 헌법 현실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탁월한 자질을 보유한 유능한 정치학자가 헌법개정 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
- ⇨ 실제로도 현재 각종 개헌 담론은 정치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
-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 ⇨ 새로운 헌법에 위와 같은 정신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정치학자의 참여가 필수
- 정치학과 교수들은 대부분 미국 유학과 ⇨ 미국연방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사법제도에 대하여 친숙
- 헌법학계의 독일, 憲裁 中心의 촘촘한 ‘네트워크’로부터 자유로움
- 국회의원들과의 유대관계는 정치학과 교수들이 헌법학 교수보다 優越
- 정치학자 발굴, 접촉, 추천하는 방안 필요

라. 설득 논리 개발

[개헌 관련 주요 이슈]

- ▲대법원장의 권한 약화
 - 대법관 제청권, 헌법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관위원 지명권 박탈
- ▲대법관 국회 선출제 도입
- ▲대법원의 최고법원성 폐지
- ▲대법관 증원
-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 현재 이관
- ▲재판소원 도입
- ▲추상적 규범통제 도입
- ▲선거에 관한 소송 현재 이관

▣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의 대법원/헌재 관계에 대한 입장 파악

- 새누리당의 입장은 이미 파악된 상황 ⇨ 대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 더민주당, 국민의당의 입장 파악 긴급 ⇨ 개인적 인맥 동원 비공식접촉
 - 국회의원, 보좌관 외에 당 수석전문위원 등 당직자들과의 접촉도 필요
 - 장○○

■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연구**

-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에 관한 사항에 집중하여 정보수집 필요
- 각 쟁점에 관하여 최대한 명쾌한 설득 반박 논리 개발하고, 해외 사례 등으로 명확히 뒷받침할 필요
- 외국 입법례를 왜곡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반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상대방의 논리를 제압할 만한 선명한 논리와 명분이 필요

■ **거시적 시각 유지 필요 ⇨ 통합형(미국, 일본), 상하분리형(독일), 수평분리형(오스트리아)의 장단점 비교**

- 통합형(미국, 일본), 상하분리형(독일), 수평분리형(오스트리아)의 장단점을 비교한 국내외 문헌 조사 ⇨ **상하분리형의 단점, 통합형 또는 수평분리형의 장점 명쾌하게 설명할 논리 개발**

■ **對 여당 맞춤형 설득논리 개발**

- 대응논리 개발하되, 상황 여의치 않으면 법원/헌재 부분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측면 강조

■ **對 야당 맞춤형 설득논리 개발**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인선에 정치적 영향력이 더 좌우되기 쉬운 구조임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될 경우 보수정권이 헌재를 장악하게 되면 재판소원이 사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략할 우려 있음



- (예) 김진태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위해 협력한 내용, 통진당 사건에서 헌재가 보여준 태도 등 지적

- 헌법재판소의 보수적 결정례 취합 필요 ⇨ 문○○, 최○○

- 야당과의 유대 관계 구축 위해 개헌 관련 참고 자료 제공

- ▲통치구조 대안 모색, ▲경제민주화, ▲현대적 기본권, 시사성 있는 기본권(청년실업, 양극화 등), 경제적 기본권 등

▣ **헌재의 업무 및 구성과 관련된 논리 개발**

- 헌재의 업무를 법원과 분리시킬 필요

- 헌재 헌재는 재판소원 등 법률적 쟁점에 관심을 가지고 법원 영역을 침해하고 싶은 경향을 보임

- 이는 헌재가 법조 출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 재판관의 인적 구성부터 법원과 다르게 분리시킬 필요

- 헌재의 구성

- 헌재 재판관은 법조 자격자에 한하여 될 수 있음.

- 그러나 선진 각국의 헌법재판관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

- 재판관 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치학자 등을 재판관으로 ⇨ 헌재의 탈 법조화 ⇨ 헌재의 정치적 사법기관화

마. 對 언론 관련 대응 방안

- 여론전 불가피하므로, 칼럼 기고 등을 위한 우호적 학자 및 실무자 등을 사전 포섭할 필요

- 칼럼 기고 등 후보군

- [원로급] 최○○, 안○○ 교수 등



- [중진급] 강○○, 최○○ 교수 등

6. 향후 계획

■ 추진 경과

- 개헌대응반 1차 회의: 10. 25.(화)
- 개헌대응반 2차 회의: 10. 28.(금)

■ 향후 일정

- 개헌대응반 3차 회의: 11. 11.(금) 개최 예정
- 3차 회의 전까지 준비사항
 - ① 쟁점별로 역할 분담 후 설득 논리 숙지 ⇨ 3차 회의에서 상호 논박
 - 외국 사례 파악하여 충분한 설득 논리 제공 필요

주제	담당
대법원과 헌재의 통합 필요성	이○○
대법원의 최고법원 표현 유지 필요	오○○
재판소원 도입의 문제점	최○○
한정위헌결정 금지의 필요성	임○○
대법관 선임절차 변경 반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유지 필요	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유지 필요성	정○○
명령, 규칙, 처분 등 위헌심사권 대법원 유지 필요	한○○
추상적 규범통제 도입의 문제점	시○○

- ② 기타 준비사항 ⇨ 별첨 [표] 참조

내용	담당
국회의원 면담	차장 기조실장 양형실장
보좌관 등 면담	장○○



대외비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 면담	장○○
정당별 법원/헌재에 관한 입장 확인 - 특히 친노, 친문 그룹 핵심 의원들의 입장 확인	장○○
개헌특위 참여 유력시되는 각 당별 국회의원 명단 작성 - 특위 참여 유력 이유, 개헌 관련 입장 및 활동 경력, 컨택포인트	김○○ 임○○
개헌특위 지원 유력시되는 전문위원급 이상 국회공무원 명단 작성	장○○
변호사 자격 보유 또는 헌법학 전공한 입법조사관 명단 작성	장○○
헌법학자들이 개헌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논리 개발 - 외국 헌법 개정 과정에서 정치학자 등이 참여한 사례 연구	문○○ 최○○
개헌 논의 참여 배제하여야 할 국회의원, 헌법학자 명단 작성 - 배제 논리 개발	문○○ 최○○

<끝>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방안

2018. 7. 31.

기획조생실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법무부의 협조 개요

- 법사위 검찰 출신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영향력 무시할 수 없음
 - 특히 법사위 1소위 소속 김진태, 김도읍 의원 등은 (중략)
- BH와의 밀월관계에 비추어, 법무부를 완전히 우회하여 BH를 직접 접촉·설득하는 전략은 위험부담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법무부는 원론적 신중검토·사실상 반대 입장 고수

☑ 법무부장관, 4. 8. 처장님과의 만찬 자리에서의 발언

“상고법원 도입은 일선 검찰청의 폭넓은 의견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견 무색무취의 의견 표명으로 보이나, 그 內心은 법원에 대한 견제 심리에 터 잡은 반대로 읽힘
- 이미 내부적·비공식적으로는 확고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임
 - BH와도 반대 공감대를 구축한 것으로 파악됨

▣ 법무부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타개책 모색 필요

- 법무부·검찰의 최대 현안·관심사 등 현황 및 향후 전망 분석
-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재정립 방안 검토 ⇨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설득전략 수립



2. 법무부 현황 및 향후 전망

▣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

-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개선 방안으로 상고법원을 신설하는 데에는 반대

☑ 주요 반대 논리

- ▶ 국민주권원리에 반함
- ▶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재판받을 권리 보장되어야 함
- ▶ 심급제도의 혼선 초래

- 타 기관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독자적 개선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
 - 다만, 대법관 증원론에 대하여는 진보 세력의 최고법원 진출을 우려하는 문제인식 가지고 있음

▣ 최근 내부적 현안·관심사 등

- 검사장 자리 확대 ⇨ 법무부·검찰의 최대 관심사

- 인사적체에 따른 내부 불만 증폭의 주요 원인
-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상고검찰청 신설은 매력 없음 ⇨ ∴ 검사장 최대 2 자리 가량 불과

- 디지털 증거 관련 법률 제·개정 또는 판례 변경

☑ 2015. 3. 19. 법무부장관 취임 2주년 기념 인터뷰

“안보저해사범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증거법상 특칙이나 예외를 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형사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국민일보 2015. 4. 3.자 ‘형사소송법 개정 본격 착수’ 기사

☞ 검찰, 법원의 엄격한 잣대에 위기 의식... 작년 11월 ‘증거법 연구회’ 조직, 법 개정 추진하기까지...

- 중점 검찰청 설치·운영



- 지역적 특수성 등에 따라 특정 유형의 수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지방 검찰청 지정 ⇨ 수사의 전문성·효율성 추구
 - ex) 서울남부지검 ⇨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 서울서부지검 ⇨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 울산지검 ⇨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 **BH·정치권·재계와의 관계 등 외부 상황**

● **BH와 친밀관계 지속**

- 통진당 해산결정에 따른 신뢰·공로 인정
- 비서실장 교체 되었으나, 비서실의 親검찰 기조에는 변함 없음

● **정치권·재계에 대한 대대적 사정 착수**

- 재계·자원외교·방산비리 수사 ⇨ BH發 사정 정국의 손발 역할 수행
- 前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 잠재우기 위해 가시적 성과·명분 쌓기 위해 고심

주요 수사	대상	前 정권 관련	비고
① 재계	㉠ 포스코 그룹	○	
	㉡ 두산(박○○)	○	
	㉢ 신세계, 동부, 동국제강, 롯데	△	㉣수사 장기화에 따른 국면 전환용
② 자원외교	경남기업 등	○	
③ 방산비리	일광공영 등	X	

■ **성완중 前 의원 자살의 영향 ⇨ BH·법무부·검찰에 대한 죽음의 역공, 메가톤급 후폭풍 예상**

- **성 의원이 폭로한 친박계 의원들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사 피할 수 없는 상황** ⇨ 사정 정국 조성이 오히려 역풍을 맞은 형국
 - 자칫 철저한 수사 노력 보이지 않을 경우, 검찰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



☑ 2015. 4. 12.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긴급 기자회견

“그동안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점은 인정한다... 이번에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해 불명예를 씻을 수 있다면 더 큰 소득이 될 것... 국민 앞에 의혹을 다 씻을 수 있도록 외압이 없도록 하겠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면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

- 벌써부터 야당 등 일각에서 특검 수사 필요성 제기

● BH·법무부 사정 라인에 대한 책임론 부상 불가피

- 검찰 수사팀의 실책 지적 목소리 ⇨ ① 별건·저인망식 수사(자원개발 국 고지원금 횡령 혐의 → 회사돈 횡령·분식 혐의), ② 압박용 계좌추적·반복적 압수수색, ③ 성 의원에 대한 신병관리 부실(긴급체포 미실시), ④ 선부른 폴리바게닝 시도

- 사정 정국의 밑그림 그린 우병우 민정수석의 입지 좁아질 것

■ [우 수석의 데자뷰] ⇨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1과장 재직 시 노무현 전 대통령 직접 수사 후 20여일 만에 노 대통령 자살 사건 발생

● 정책 결정의 중심 축 ⇨ 주무 장관인 법무부장관으로 이동

-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신임 비서실장의 장악력 및 민정수석의 입지 약화에 따른 여파

- VIP의 신뢰 여전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믿고 수사를 맡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법무부장관에게 보다 힘을 실어줄 가능성 높음

● 사법부에 미칠 파장은 단선적 예측 곤란

- [호재 가능성] ① BH·법무부가 위기 타개를 위한 보험용으로 사법부를 우군으로 확보하고자 시도할 가능성, ② 특히, 검찰 개혁으로 분위기 확산되는 데 촉각 곤두세우며 사법부와의 공조 필요성에 무게 둘 수 있음

- [악재 가능성] ① 민정수석의 입지 약화로 법무부장관의 목소리 더 커질 가능성, ② 친박계 의원 등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에 총력 기울여야 할 상황 ⇨ 상고법원 등 사법부 현안에까지 관심 기울일 여력 부족



☑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의 관계

- ▶그다지 원만한 관계 아니라는 게 중론
 - [민정수석] 연수원 19기 특수통, [법무부장관] 연수원 13기 공안통
 - 황 장관 취임 후 첫 검사장 인사에서 우 수석 탈락하여 검찰 사직
 - 민정수석, 법무부 상신 인사안에 대하여 과도한 영향력 행사
- ▶민정수석이 장관을 제쳐두고, 김○○ 대검 차장을 통해 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에게 직접 BH 지침 전달한다는 소문

3. 법무부 설득 전략

가. 기본 방향 ⇨ 현 상황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향 수립

▣ [WHY 상고법원안에 비협조적인가?]

- 최근 들어 법원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것에 대한 반발·견제 심리 발동 ⇨ 상고법원 도입이 사법부 최대 현안임을 인지하고 법원에 힘을 실어줄 수 없다는 스탠스
- 법무부·검찰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검찰권 통제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법원에 대하여 피해의식도 가지고 있음
 - 최근에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혁이나 법률 개정 등에 대하여 법원이 무조건 반대한다는 오해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법무부 소속 어느 검사의 발언

▶인신보호법 개정안 관련

“법원이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에 대하여까지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양형조사관 제도와 다를 바 없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과연 양 제도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

“법원의 반대는 익히 예상했던 바와 같다. VIP의 관심 법안으로 역점 추진 중이라는 것을 알고 그랬을 것이다. 거래계에서도 ‘권리금’은 이미 인정되고 있는 것인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 결국, 상고법원안에 대한 반대는 합리적 판단에 앞서 이러한 주관적 거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HOW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인가?] ⇨ 강온(強穩) 양면 전략

● 성 의원 자살로 인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 적극 활용

- 검찰 개혁론까지 불거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법무부·검찰도 법원과 우호적 관계 형성을 내심 원할 것임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피의자 자살 등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 착수할 수 있음 ⇨ 법원의 협조 확보 필요

■ 최근 10년간 수사 중 자살 피의자 80명

- 성 의원 자살 책임론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압박 방안 모색

● 감성적·정서적 관계 재정립 시도 필요

- 법무부는 법원에 대하여 특별히 바라는 요구사항이 없다는 태도 ⇨ 1~2개의 현안과 주고받고 식의 딜이 성사되리라 낙관할 수 없음

- 총론적 차원에서 법원과 법무부·검찰의 법질서 수호를 위한 동반자 관계 등을 어필하여 동류의식 확보 필요

- 압박 방안보다는 회유 방안 제시가 필요한 상황

■ 법무부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압박 방안은 관계를 악화시키는 부작용만 낳을 우려 있음

■ 더구나 상고법원안 추진의 시급성·절박성을 이미 지득한 법무부가 압박 방안에 굴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 농후

나. 구체적 압박 방안

▣ ①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절차적 통제 방안

● 현재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사실상 일반영장처럼 운용되는 결과 ⇨ 검찰의 광범위한 별건 수사와 이를 통한 영향력 확대 초래 ⇨ 이에 대한 엄격 통제를 강구하는 방안

- [ex] 수색영장·압수영장의 분리 발부 방안, 압수수색 방법의 사전 제한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 방안, 압수물 반환·폐기 의무 명시 방안, 당사자



의 참여권 보장 실질화 방안, 압수목록의 교부 의무 강화 방안 등

- 언론에 위와 같은 통제 강화 방안을 공표하고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할 수 있음을 암시 ⇨ 성 의원 수사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의 문제점을 공론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음

▣ **②체포영장제도 개혁 방안**

- 현재 법관에 의하여 전부 심사·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영장 없는 체포를 활성화**하여 수사기관에 체포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주는 방안
- 한편, 이는 필연적으로 보석 조건부 영장 제도 등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되어 오히려 법무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음

▣ **③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추진 방안**

-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의하면, 변호인은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검찰에서는 내부규칙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운영지침**’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를 참관할 수 있을 뿐, 피의자와 변호인이 수시로 상의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음

☑ 한국경제 2014. 12. 3.자 ‘**檢·辯, 피의자신문때 변호인 참여범위 놓고 힘겨루기**’ 기사

▶변호사업계 전체가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규칙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 반면, 검찰은 “변호인이 신문 참여를 핑계로 수사를 방해한다”고 불멘소리를 내고 있다.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 범위를 법률 내지 규칙 등에 명문화하는 방안

▣ **④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신문과정에서의 필요적 참여 제도**

-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우선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의 필요적 참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다. 구체적 회유 방안

1) 법무부·검찰 조직 및 기능 확대

▣ ①검사장 자리 증설 방안

- [조직] 법무부 송무차관직(제2차관) 신설 ⇨ 그 산하에 국가송무국, 국제법무조약국 등 검사장급 보임 가능한 2개 이상의 국 설치

☑ 미국의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제도 참조

- ▶ 1870년 Judiciary Act에 의해 설치
- ▶ ①정부가 패소한 모든 사건 검토하고 상소 여부 결정, ②어떤 사건을 대법원이 심사할 것인지 의견제출, ③대법원의 모든 사건에서 미국연방을 대표
- ▶ 산하에 4명의 부차관(Deputy)과 20여명의 차관보(Assistant solicitor) 두고 있음
- ▶ 평판 높은 전문지식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받고 있음

- 상고검찰청 신설과 함께 추진 시, 최소 5명의 검사장 자리 증설 가능

- [기능①] 신설된 송무차관 조직에서 법정조언자 의견제출(Amicus curiae) 업무 적극 수행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에서 국가 의견 및 공익 대변

- [기능②] 상고법원안에 따른 대법원의 사건분류심사 절차에서, 공식적으로 사건분류 의견 개진

▣ 前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검사 보임

- 파견 검사를 형사공동조 등에 투입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 법리 검토 등 역할 부여

- 대법원의 수사실무 등 형사사건에 대한 입체적 이해도 제고 ⇨ 형사재판 판례 형성에 반영

- 연구업무에 관심 있는 상당수 검사들의 선호 있을 것 ⇨ 검찰 인사 적체 해소에 실효적

▣ ①법무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교차 파견



- 검사를 사법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형사법 관련 연구업무 부여

☑ **사법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위촉 근거 법령**

▶ **법원조직법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②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하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 **법원조직법 제76조의5(초빙연구위원)**

① 제76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빙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법무연수원에 판사를 파견하여, 검사·수사관들 대상으로 형사재판 관련 특강, 형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업무 등 수행

☑ **법무연수원 조직 및 기능 개요**

▶ [기획부와 교정연수부]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

▶ [연구위원] 형사·법무정책 수립,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 연구위원 보임자격 ⇨ 고위 공무원 단체 소속 일반공무원 or 검사

▶ 교수 ⇨ 자격 제한 無

- [파견요건] ①국가기관의 파견 요청, ②업무의 성질상 법관 파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해당 법관의 파견근무에 대한 동의, ④법원의 허가

■ [파견요건 충족 여부] 연구업무는 형사재판분야와 밀접한 관련성 有 ⇨ 법원조직법 제50조의 「업무성격상 법관파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해당

- [파견기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연장 가능

- [점토] 직제규정(대통령령) 개정하지 않는 이상 연구위원으로 보임하는 것은 곤란, but 교수로 보임하는 것은 가능

- 수사 및 형사재판, 형사법제도 관련 법원·검찰의 상호간 인식의 간극 좁히고, 법질서 수호 및 국민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공동의 연구



성과 창출

▣ ④공안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

- 검찰의 이른바 '안보위해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요청
- 공안사건에 대한 법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건 처리의 일관성·효율성 도모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법원에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 등에 관한 전담 재판부 설치

▣ ⑤특성화법원 설치 방안

- 검찰의 이른바 '중점 검찰청 설치 방안'에 적극적으로 대응
- 법원에서도 일부 지방법원을 특정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

2) 검찰의 효율적 수사실무 지원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확대 방안

- 최근 검찰은 공안사건에서 작성명이 불명확한 디지털증거(ex. 북한으로부터 수신된 이메일)의 성립진정 인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 ⇨ 증거법 개정 주장 제기
- 위와 같은 증거의 성립진정 인정에 관한 새로운 기준 마련 ⇨ '反테러법'과 같이 공안사건에 특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입법 과정에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 前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 일선 검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불만 사항은 구속영장발부의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 ⇨ 그 해결방안으로 영장항고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



- 법원은 판례를 통해 영장항고를 불허하고 있고, 입법론 관점에서도 조건부 석방제도와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 취해 옴
- 구속영장재청구를 영장항고제로 통폐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안
 - 항고이유의 사실상 생략 등 유연한 형태로 제도 운영한다면, 제도 도입에 따른 법원의 부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 ①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 도입 방안

- 실제 수사현장에서 묵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플리바게닝을 공식적으로 법제도화하는 방안
 - 뇌물, 마약, 조직폭력 사건 등에서 먼저 도입하고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협상 가능
- 최근 성 의원 자살 원인의 하나로 검찰의 무분별한 플리바게닝 지적 ⇨ 단기적으로는 추진의 장애 요소일 수 있으나,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 될 수 있음

■ ④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방안 (2011. 7. 정부 제출 형소법개정안)

- 범죄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구인영장 발부받아 강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협조

■ ⑤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 도입 방안 (2011. 7. 정부 제출 형소법개정안)

- 뇌물범죄, 범죄단체 조직범죄 등에 대하여 범죄 가담자가 범죄규명에 필수적 증언을 한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협조

■ ⑥ 사법방해죄 신설 방안 (2011. 7. 정부 제출 형소법 개정안)

-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



사하는 공무원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를 처벌하고, ② 타인의 증언 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허위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폭행·협박하거나 타인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약속·공여·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처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

- 참고인의 허위진술로 인한 수사절차의 지연, 수사인력·비용 낭비 등 문제점 해소에 기여

3) 기타 법무부·검찰이 추진하는 제도 개혁

▣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방안

-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에 인신보호관을 두어 피수용자의 구제청구 등을 지원하는 방안
- 구금시설 피수용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인신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선회

▣ 前상가건물임대차거래에서 '권리금' 법제화 방안

- 거래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권리금을 법으로 인정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을 보호하는 방안
- VIP 지시로 법무부가 외국 사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발의
- '권리금' 개념의 법제화에는 동의한다는 입장 명확히 제시
 - 종래에도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 제약,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개념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 제시한 바 있으나, 권리금 법제화를 비롯한 상가건물임대차제도의 개선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님

라. 구체적 설득 전략 ⇨ See-Feel-Change 전략

▣ [See] 단계



- 4. 8. 처장님과 법무부장관의 회동으로 만남의 첫 물꼬 열린 상황
- 법무부와 핫라인 구축·가동
 -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행정처 실장 등 사이
 - 수시로 상고법원을 비롯한 현안 관련 의견 공유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활용

■ [Feel] 단계

- 호혜관계 구축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 4월 임시국회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신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묵인하는 방안 검토
-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대승적 협력 先요청
 - 법무부·검찰이 관심 가질만한 현안을 하나씩 미리 꺼내드는 것보다 상고 제도 개선의 시급성·절박성 지속적으로 설명
 - 협력의 반대급부로 법무부·검찰의 現위기사황 타개를 위한 원론적 협조, 향후 수사제도 개선 작업 등에 대한 지원 약속
 - 법무부의 요구사항 있다면 무엇이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적극적 의견 피력
 - 상고법원 도입에 계속 반대 시, '관계 단절' 을 암묵적으로 표시

■ [Change] 단계

- 최근의 외부 상황 등에 비추어 법원과의 관계 단절에는 큰 부담 느낄 것 ⇨ 어떤 형태로든 상고법원안에 대한 변화된 태도나 솔직한 입장 나타낼 것
- 구체적 요구사항 제시해 올 경우 ⇨ 수용가능성 및 득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
- 구체적 요구 사항 제시 없이 상고법원의 문제점만 지적할 경우
 - 원안 외 여러 대안도 가능하다고 설득



-
- ex) 상고법원을 대법원 안에 두는 (가칭) 상고원 신설 방안, 국회에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하는 방안, VIP 임명권 강화하는 방안, 형사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정하는 방안 등
 - 아울러, 다양한 구체적 회유 방안 제시 ⇨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카드로 활용

4. 29.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 분석

2018. 7. 31.

기획조생실

1. 재보선 결과 ⇨ 여당 3곳, 무소속 1곳 당선

재·보선 득표율		※29일 23시 현재	
●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 무소속	단위: %
서울 관악을	● 오신환 43.8	● 정태호 34.1	
인천 서강화를	● 안상수 53.5	● 신동근 43.5	
경기 성남 중원	● 신상진 55.9	● 정환석 35.6	
광주 서을	● 천정배 52.3	● 조영택 29.8	

▣ 여당 압승 ⇨ 광주 제외 3곳 전승

- 야권 성향의 관악을에서 사상 첫 당선
 -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후 27년만에 보수 정당 후보 첫 당선
 - 야당 분열로 인한 반사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의미 큼
- 야권 성향 성남을 탈환
 - 야권 연대로 통진당 후보 당선된 지역 ⇨ 56%의 압도적 득표로 탈환

▣ 야당 참패 ⇨ 광주에서도 무소속 천정배 당선

▣ 성완중 리스트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여당 완승 ⇨ 여당의 선제적, 공세적 대응 주효

- ①과거 정부에서의 성완중 사면 특혜 문제로 강한 역풍, ②총리 조 기 사임, 특별검사 주장, 야당 대표 공격 등 선제적 대응, ③정치권 부패 문제와 BH 분리시도 성공 등 대응전략 모두 성공
-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는 통념도 극복 ⇨ 젊은 층의 일부 관심 제고보다 보수층의 결집 효과가 다대하였음



2. 정국에 미칠 영향 분석

▣ 여당에 국정 주도권 ⇨ 김무성 체제 공고화로 공무원연금 등 강공

- 김무성 대표, 내년 총선 및 차기 대선에 대한 강한 자신감 획득, 위상 강화 ⇨ 최대 수혜자로서 국정 중심축 자임

☑ 김무성 대표, 완승 직후 첫 인터뷰

'재보선 3곳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건 여야가 합의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다' ⇨ VIP 순방 직전 단독회담을 통해 확인된 국정 중심으로서의 존재감이 더욱 강화되어 향후 명실상부 국정 주도할 것임

▣ BH, 성완중 블랙홀 무사 탈출 ⇨ 개혁 드라이브 예상

- 성완중 리스트를 오히려 정치개혁의 전기로 삼을 것임 ⇨ 종래의 4대 개혁 과제와 함께 국정 주도권 회복 시도
- 재보선 승리로 총리 인선에서 정무적 요소 부담 감소 ⇨ **법조인 출신 관리형 총리** 유력
- 총리 인사청문회만 무난히 넘어간다면 국정 운영 동력 회복 예상

▣ 야당 ⇨ 내부 계파 다툼으로 정치 동력 상실 예상

- 문재인 대표 책임론 불가피 ⇨ ①관악 및 광주에서 야권 분열을 막지 못한 책임 ②성완중 정국에도 불구하고 야권표 결집하지 못한 책임
- 친노와 반노간 극도의 반목 표출 예상 ⇨ 호남 중심 신당 논의 가속화

☑ 완패 직후 야당 의원 반응

▶ 범친노계 최재성 의원 '문재인 대표가 책임질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있어 문대표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7. 30. 재보선 패배와는 다르다'

▶ 반노 의원 '공천부터 선거전 고비고비마다 문재인 대표의 미숙한 정국 관리가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다'

3. 사법부에 미칠 영향 분석

▣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 예정대로 직권상정 후 무사 처리 예상



- 야당의 조직적 반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 시민단체 등의 막판 거친 공격 예상되나 국회 처리에 영향 미미

■ 5. 7. 야당 원내대표 선거 ⇨ 유례 없는 혼전 예상

- 친노 진영 공식 후보 내지 않는 상황에서 재보선 참패 ⇨ 비노 진영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노 진영의 유력 후보로 박지원 계의 지지를 받던 박기춘 의원이 이미 4. 27. 불출마 선언
 - ※ 6인의 후보 중 5인이 경기 지역구 의원이어서 부담스럽다는 이유를 듦
- 내년 총선 공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여서 총력전 예상

	선수 및 지역	계파	비고
이종걸	4선 안양만안	김한길계	4번째 도전
최재성	3선 남양주갑	정세균계 (범 친노)	지난 원내대표 선거 1차 3위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이 변수
김동철	3선 광주 광산갑	김한길계 겸 손학규계	영남 당대표 호남 원내대표론
설훈	3선 부천원미을	동교동계 겸 김근태계	재보선 참패 후 '저격수'의 선명성 부각
조정식	3선 시흥을	손학규계	친노가 계파색 얹은 조정식 의원을 지원할 가능성

- ⇨ 1차 투표는 물론 결선투표 단계에서 합종연횡으로 결론 날 것임
- ※안철수 전 대표의 원내대표 합의추대론 제기 ⇨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 낮음

☑ 안철수 전 대표의 발빠른 제안

▶ 재보선 다음날 먼저 면담을 제안하여 '원내대표 선거로 다시 갈등이 표출될 수 있으니 문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선거 결과가 다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안

▶ 문 대표 사퇴론 조기 진화 효과, 단 내년 공천권 걸려 있어 합의추대 난망



■ 상고법원 관련

- BH의 국정 장악력 회복 ⇨ 유리한 요소는 아님
 - 특보단과 비서실장을 통한 우회전략 계속 강구해야 함
- 김무성 대표 입지 강화
 - 김 대표 상대 집중 설득 작업 필요 ⇨ (적극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반대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 또는 목시적 찬성 당론을 유도하는 방안 필요
 - 상고법원안에 관한 김무성 대표 설득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정수석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가치 있음
 - BH와 무관한 김무성 대표의 독자적인 작품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접근
 - [김무성 대표 접촉 루트] 홍일표 의원과 친분이 깊으므로, 홍의원의 추천을 받아 접촉함이 상당함
 - ※ [참고]김무성 대표, 최근 한명숙 사건 상고심의 신속한 처리 요청
- 야당 극도의 분열 ⇨ 당론 채택 불가 상황
 - 친노 중심 지도부 당장악력 급속 상실 및 계파별 분열 심화 ⇨ 구심점 상실로 상고법원에 대한 당론을 정할 여력 없음
 - 개별 의원의 찬반 활동 예상되므로, 종전의 개별 설득 작업 지속강화 필요
- 법무검찰
 - 여당의 완승으로 향후 수사에 부담 덜게 됨 ⇨ 상고법원에 대한 견제 작업 지속될 것임

■ 기타

- 재보선 과정에서 당선자의 선거법 입건 사항 아직 없음
 - 고소고발도 없는 편임(신상진 당선자에 대하여는 구 통진당에서 허위사실유포로 고발)
 - 당선자로 인한 법사위 인적구성 변경 가능성 희박. 끝.



상고법원 설치안 대국민 설득 방안 검토

2018. 7. 31.

기획조정심의관(鄭)

◆ [요지] 상고법원 설치안 추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 조건
이므로 그에 맞는 최적의 **對국민 설득 전략·방안을 검토함**

1. 검토 배경

■ 최근 접촉한 국회의원들은 상고법원 설치안의 순조로운 추진에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국민 여론의 향배가 입법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 ⇨ 치밀하고 종합적인 **대국민 설득 전략**이 필요”

■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면 **법관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함

● 정해진 프레임 안에서 논리와 법리를 따지는 **‘법관의 방식’**은 자기 만족에 그칠 뿐 **對국민 설득에서는 毒** ⇨ **국민의 눈높이에서, 논리를 떠나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쉽고 간결한 접근** 방법 필요

-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결국 정치인이 선거에 임하는 것 또는 기업이 상품을 광고하는 것과 본질이 같음 ⇨ **정치인의 선거 전략과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야 함

☑ “유권자는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지 않고 **‘좋다, 싫다’**로 판단한다.”
⇨ 선거운동에 관한 격언

■ 먼저 어떤 **이미지(image)**와 **입장(position)**으로 접근할지에 관한 **총론적인 의견 통일**이 있을 후 **각론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이미지메이킹(image making)** 전략 측면 ⇨ 이미지(image) 통일

● **협상(negotiation)** 전략 측면 ⇨ **입장 표명(positioning)** 통일



2. 총론적 접근

가. 이미지메이킹 전략 측면

▣ 이미지메이킹(image making)과 이미지 통합(image identity)의 필요성

- 치밀하게 계산된 통일적 이미지로 국민 여론의 첫인상을 초기에 사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지속력·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이미지 통합(image identity)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일례

▶ 올 초 환형유치 판결 논란 당시

☞ 3. 24. 대한변협 성명에서 '황제노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이전에 산발적인 주목만 받던 위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어 국면이 급속히 악화됨

▣ ① 긍정적 이미지를 포함한 타이틀 네이밍(naming) 필요

- 국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정책의 '타이틀'
⇨ 성공한 정책 홍보·여론 형성에는 항상 성공한 네이밍이 있었음
-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어색하게 보일 정도의 네이밍 필요
- 현재의 '상고법원 설치안' 로는 긍정적 이미지를 기대할 수 없음

☑ 정책 홍보 과정에서 성공한 네이밍

▶ '통일대박론' ⇨ 통일의 경제적 이점을 한 단어의 서민적 용어로 전달하는 데에 성공

▶ '햇볕정책' ⇨ 이습우화를 연상시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포용 정책의 긍정적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정책 성공 가능성 암시

▶ '대법관구성다양화' ⇨ '획일화'에 반대되는 '다양화'라는 단어의 긍정적 이미지를 통하여 설득력 강화

▶ '정부3.0' ⇨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참신하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전달하여 긍정적 반응 획득

- '3단어 내외'의 '긍정적 단어'를 이용하여 정책의 '고유 이미지'에 사법부가 원하는 '보조 이미지'를 결합시킨 정책 타이틀 개발 필요



- ① 3단어(7~8자) 내외의 짧고 간결한 타이틀 ⇨ 쉽게 기억에 각인
- ② ‘상고심 제도에 변화를 가한다’ 라는 정책의 ‘고유 이미지’ + ‘변화의 방향은 국민을 위한, 긍정적인 것’ 이라는 정책의 ‘보조 이미지’ 로 구성
- ③ 보조 이미지의 표현에는 ‘긍정적 단어’ 를 반드시 포함
 - 긍정적 단어의 예 ⇨ 혁신, 개선, 효율, 충실, 통일, 정상화, (권리의)보장, (권리 보장의)확대, 실질화, 다양화, ‘국민을 위한’, ‘좋은’, ‘바람직한’ 등
 - 다만, 반대해석상 기존의 대법원 재판에 부정적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주의 (예: ‘상고심 제도 정상화’ 방안 ⇨ ‘이전의 대법원 재판은 비정상?’ ⇨ 어느 정도는 불가피, 다만, 어디까지 수인할지의 문제)

☑ ‘상고법원 설치안’을 포함한 상고 제도 개선안 네이밍의 假案

- ▶ ‘상고심 제도 **정상화**’ 방안
- ▶ ‘상고심 재판 **실질화**’ 방안
- ▶ ‘**국민을 위한** 상고법원’ 방안
- ▶ ‘**바람직한** 상고심 재판’ 방안 등

- ② **주요 논거**를 짧고 쉬운 **슬로건·캐치프레이즈화**하여 반복 사용 필요
 - 가장 주된 논거 3~5개는 통일된 문구로 확정하여 모든 문건에서 정책 타이틀과 함께 기재하는 슬로건·캐치프레이즈로 지속적 사용 ⇨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반복·강조하여 긍정적 이미지 형성
 - 향후 언론기관이 국민에게 제도를 설명하는 보도를 준비할 때 쉽게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사전 제공·유도
 - 특히 현재까지 언론 보도 내용에 드러난 국민적 요구 사항·의문 사항을 해소해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 ‘20자 내외’의 ‘쉬운 단어’를 이용하여 주요 논거를 풀어내되, 법리적·논리적인 핵심 논거와도 동떨어지지 않아야 함
 - ① 20자 내외 ⇨ 각종 국가 행사·정책의 슬로건 공모 시 **통용되는 원칙**



- [예]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입니다’ ⇨ 14자
- [예] ‘나라의 큰 별, 살아있는 정의,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 21자
- ②슬로건을 상세 설명하는 것 자체로 정책에 관한 법리적 해설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일단 슬로건의 표현은 쉽게 하되, 논리적 구조는 심도 깊은 법리적 해설의 알고리즘을 염두에 두고 구성함
- [예] 보조 법정 이외의 공간으로의 화상 전송은 “ ‘재판 중계방송’ 에 해당하므로 실시하기 어려움” ⇨ 위와 같은 명제로 주된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한 후 ①중계방송이라고 보는 이유, ②중계방송이 불허되는 이유를 각각 풀어 설명하면 되도록 준비
- 입법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논거가 보완·추가될 것 ⇨ 가장 기본이 되는 최초의 논거를 신중히 택하여 위와 같이 구성

☑ ‘상고법원 설치안’ 논거 슬로건化의 假案

- ▶ ‘①국민의 세 번째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23자, 간단히 쓸 때에는 ‘①세 번째 재판받을 권리 보장’)
- ▶ ‘②대법원이 최고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합니다’(22자, 간단히 쓸 때에는 ‘②최고법원 역할 충실화’) 등

■ ③비교법적 사례 소개를 통하여 생소한 이미지 해소 노력

- 상고법원이 유례없는 제도임이 부각되기보다, 상고허가제 등을 비롯한 상고심 개선 방안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음이 부각되도록 하여야 함 ⇨ 생소하고 낯선 이미지를 조기에 해소
- 상고법원안도 그러한 상고심 개선 방안의 하나인데, 상고허가제가 우리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고안된 제도임을 강조하여야 함
-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례의 소개를 통하여 국민에게 안정감·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미국도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상고심 개선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

☑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허가제 도입 과정

- ▶ 1789년 미국 연방대법원 설립 당시에는 **상고 제한 제도 전무**
- ▶ 남북전쟁 이후 연방법 제정 급증, 인구·경제규모 팽창 ⇨ **사건 급증으로 상고 사건 처리의 한계 봉착** ⇨ 연방항소법원 설치로 문제 해결 시도
- ▶ 1925년 태프트 대법원장 **상고허가제 추진** ⇨ “당사자 사이에서 정의를 세우는 데에는 두 번의 재판이면 충분하다, 세 번째 재판은 더 높은 차원의 문제가 관련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 ☞ **미국 입법 절차의 다양한 논의 내용을 소개할 필요가 있음**

나. 협상 전략 측면

▣ 최초의 입장 표명(positioning) 전략

- 입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상호 양보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최초의 원안을 고수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큼
- 특히 대한변협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대법관 증원론’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勢싸움과 타협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최초 입장은 극대화 입장(maximalist position)을 제시하여 수정·양보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①일단 ‘대법관 증원론’의 반대 극단에 위치한 ‘상고허가제안’을 제시 ⇨ ② ‘대법관 증원론’을 주장하는 측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절충안으로서 ‘상고법원 설치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시도

▣ 결국 중도 수정 가능성도 감안하여 이미지메이킹을 준비하여야 함

- 네이밍,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등도 상고허가제안과 상고법원 설치안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설정하여야 함



3. 각론적 접근

가. 간접 홍보 방안①: 對언론기관

▣ ①주요 언론사 사회부장 대면 설명

- 권○○ 논설위원이 대법원과 25개 언론사 사회부장의 간담회를 요구하고 있음 ⇨ 긍정적 검토 필요
- 특히 대법원장께서 주재하실 경우 높은 국민 신뢰도와 설득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호소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할 것

▣ ②계속적인 신문 기고

- 현재 대법관 증원론을 주장하는 측에서 상고법원안의 문제점과 대법관 증원론의 필연성을 기고하고 있음
- 일단 대법관 증원론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기고 추진
 -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 어려움, 소부 중심의 대법원 운영의 문제점 등 부각 ⇨ 특히 대법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을 강조
- 상고법원안의 내용이 구체화되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기고문에 언급함

▣ ③전·현직 대법관 인터뷰

- 전·현직 대법관을 인터뷰하고 그 일상생활을 취재할 기회를 제공 ⇨ 상고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간접적 방법으로 강조
 - 현재 동아일보에서 홍보심의관을 통하여 ‘대법관의 일상생활을 취재하고 싶다’ 는 의사를 전달해옴
- 기록 검토 과정, 합의 과정도 그 一端이나마 공개할 수 있다면 공개하여 활용할 필요 ⇨ 가능할 경우 대법관들의 현실적 업무상 애로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 ▶ **연방대법원 홍보 영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있음
 - **집무실의 모습**
 - **합의 과정**(합의하는 영상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 인터뷰를 통하여 합의 과정의 풍경을 스케치함**, 특히 **'전원이 한 번씩 발언을 마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두 번째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작지만 민주적인 합의 원칙과 문화**를 공개하여 합의가 얼마나 진지한 분위기와 전통 아래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강조)
 - **판결문 배부 모습**(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음성이 판결문 배부실로 중계되도록 되어 있어 **정확히 주문 낭독 직후에 판결문 부분 배부됨**)

■ **4] 주요 언론사 법조 담당 논설위원 접촉**

- 언론의 실질적인 논조를 주도할 논설위원들을 개별 접촉하여 대법관 증원론의 문제점과 상고법원안의 긍정적 측면을 **지속적 설명**

나. 간접 홍보 방안②: 對국회

■ **법사위원 그룹별 공관 초청**

- 종래의 공관 초청은 **전체 법사위원을 초청하는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는 경향이 컸음
 - 초청된 인사들도 '여러 법사위원의 한 명(one of them)으로 초청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초청의 의미를 평가절하**
- 법사위원들을 성향별로 분류하여 **소그룹별로 특별 초청** ⇨ 친밀한 분위기에서 **한 명 한 명 공들여 설득**하는 모습을 보임

☑ **태프트 미국 연방대법원장의 상고허가제 입법을 위한 다양한 설득 노력**

- ▶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 선별 재량권 입법은 태프트 대법원장의 평생 소망이었다고 함
- ▶ 이를 위하여 태프트 대법원장은 **하원법사위원회 참석, 법무차관에 대한 설득, 하원 의원에 대한 설득, 법사위원장에게 호소문 전달, 미국변호사협회(ABA) 지원 요청, 연두교서 작성, 대법관들의 상원 청문회 적극 지원 계획 수립·시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



다. 직접 홍보 방안: 對국민

■ ① 설문조사

- 여러 정책 방향을 놓고 특히 언론기관이 주도하는, 다양한 설문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타 기관에서 주도한 설문조사 결과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설문의 내용을 객관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히 구성 ⇨ 부당하게 사법부에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를 강구하는 의미도 있음
 - 또한 설문조사 실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② 공청회

-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 ⇨ 쉽고 간결한 논리를 광범위하게 전파하고 학계, 변협 등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함

■ ③ 각종 시민단체·이익단체 접촉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의 의견 표명을 통하여 영향력 행사할 가능성 있으므로 사전에 접촉하여 설득
- [민변] 치밀한 대응 논리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적극적 반대가 아닌 소극적 이익 대변 논리로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함
 - 前 민변회장 김○○ 변호사: 올 초 대한변협 토론회에서 ‘대법관 증원론’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표를 한 바 있음
- [대한변협] 차기 회장 유력 인사 등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인사를 상대로 개별 접촉. 끝.



2015년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 전망과 대응전략

2018. 7. 31.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 다양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필요한 **외형적 세력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임**

- 현재 167인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기로 한 상황

- ▣ 하지만 **입법 견제·방해 세력의 거센 도전**이 시작·진행되고 있음

- 그에 따라 향후 매우 어려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최악의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

- ▶ 연초에 법사위 전체회의·제1소위 상정
- ▶ 소위에서 “계속 심사” 의견으로 속행 ⇨ 사실상 논의 보류
- ▶ 내년 하반기 여야 정당 총선 대비 국면 돌입 ⇨ 이후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의안 자동 폐기

- ▣ 현재 **입법 추진 환경 분석**하고 2015년 도래할 **변화를 전망**할 필요

- 전망 분석 내용에 따른 구체적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시기임

- 기본 방향 설정, 구체적 대응 전략 제시 필요

2. 현황 분석

가. 국회

- ▣ **여당** ⇨ **수뇌부에 반대 기류가 지배적**임

- **검찰 출신** 의원들이 반대 세력의 중심임

BH와 검찰의 영향력 행사가 주원인으로 보임



■ 야당 ⇨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 기류 강함

- 특히 민변과 연계성 강한 靑盧 의원들이 반대 세력의 중심임
- 대표적으로 전해철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 등

☑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당내 사정[계파 갈등]으로 인하여 입장 차가 존재함

■ 문제의 심각성 ⇨ 반대 세력들이 주로 법사위에 포진되어 있음

나. 법무부 · BH

■ 법무부 ⇨ 반대 입장의 구심점

- 각종 궤변적 논리를 늘어놓으며 전 방위적으로 방해 전술 구사
- ex. ‘대법원의 기득권 수호 의도’, ‘국민주권 원리에 반함’ 등

☑ 반대의 주요 원인

- ▶ 형사사법 주도권 상실 우려
- ▶ 법원 영향력 지속적 강화에 대한 견제 심리 발동

■ BH ⇨ 비서실의 靑검찰 구성으로 법무부의 방침에 동조하는 입장

- 실세 비서실장 ⇨ 원활한 국정 운영에 관련 있는 사법 현안에 관한 대법원의 비협조에 대한 불만 표출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 등

☑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 ▶ 당분간 법무부 입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임
- ▶ 특히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사이에 압도적 차이 ⇨ 사실상 정권의 완승을 이끌 어낸 법무부에게 상당한 공로가 인정될 것임

■ 기타 [장윤석 의원]

- (중략) ‘대법관 구성 다양화’라는 명분하에 표출 ⇨ 부정적인 기류를 전파하는 진앙 역할을 하고 있음



다. 민변

▣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임

- 이를 위하여 전 방위적 접촉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 진보 성향 인사의 대법원 진출이 실질적 목표로 보임

-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표면적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음
- 신○○ 대법관 후임 대법관에 진보 성향 인사를 임명 시 ⇨ 상고법원안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함

☑ 한편, 실제 회원들 사이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

▶ 회원 수 1,000명에 육박[올해 현재 935명] ⇨ 초창기부터 유지하고 있었던 사상적 일체성·유대감 상실·희박

▶ 다양한 사상적 스펙트럼 존재 ⇨ 상고법원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갈릴 것으로 분석됨

라. 언론

▣ 주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음

- 국민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여타 이슈에 집중

▣ 다만, 최근 대법원에 다소 비우호적 입장 형성의 조짐이 있음

- 일련의 시국·노동 사건 선고 이후 진보 성향의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부정적 기류 형성

- 철도노조 파업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YTN 해직 기자 사건 등

마. 기타

▣ 경실련

- 원칙적 반대 입장

▣ 참여연대

- 내부 의견 미조율



3. 대응 전략의 기본 방향

▣ 1강은強穩 양면 전략 필요

- [반대 세력 실상] 외형적으로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궁극적 목표에 차이가 존재함 ⇨ 주관적 연대감 부재

- 전체 심리·비협조에 대한 불만 vs. 진보 성향의 대법관 배출

- [대응 방향 기조] ①전선 형성의 확대는 지양, ②약한 고리에 대하여는 총력 돌파 전략, ③강한 고리에 대하여는 협상을 추진 ⇨ 양동작전 구사

- 전체 전선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개별 세력 차원에서도 그러함

☑ [예] 민변의 경우

- ▶ 다양한 사상·의견의 스펙트럼에서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민변 내 상고법원안 찬성 세력 확인·모색 ⇨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도·독려하여 세력 약화 시도
- ▶ 강한 고리에 해당하는 주도적인 반대 세력에 대한 대응 ⇨ 시변 등 대적할만한 보수적 변호사단체로 하여금 반대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여 대응

- 이러한 의도를 양측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효과적임

▣ 2범 실·국 차원 전술 모색 필요

- 돌파와 협상을 위한 다양한 카드[아이템] 발굴 필요

- 범 실·국 차원에서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고 협업에 나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 검토·모색 가능한 대응 방안의 예시

☑ 현 정권과 사법부간 관계 재정립 방안

▶ 배경·취지

- 대법원은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법정책 추진과 당면 사법개혁 과제 해결을 위하여 예산과 조직의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옴 ⇨ 그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BH로부터 간접적인 압력을 받으며 수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사실임 ⇨ **對BH 관계에서 본질적인 한계로 작용**

▶ **구체적 방안**

- 정권과 관계를 재정립하고 위와 같은 한계를 근본적으로 탈피하기 위하여 독립적 관계, 나아가 **'관계 단절'을 암묵적으로 천명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예산·조직 확보 활동 중단, 인건비 등 기본 예산만으로 사법부 본연의 업무에 만 충실**

▶ **검토 사항**

- 사실상 **최후적 수단**이므로 그로 인한 **득실과 적절한 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각종 형사사법 현안 검토를 통한 법무부와 관계 재정립 방안**

[압박 방안]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절차적 통제 방안**

- 현재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사실상 일반영장처럼 운용**되는 결과 ⇨ 검찰의 **광범위한 별건 수사**와 이를 통한 **영향력 확대** 초래 ⇨ 이에 대한 **엄격 통제**를 강구하는 방안
- [예] **수색영장·압수영장의 분리 발부** 방안, 압수수색 **방법의 사전 제한**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 방안, 압수물 **반환·폐기 의무 명시** 방안,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실질화 방안, **압수목록의 교부 의무 강화** 방안 등

▶ **체포영장제도 개혁 방안**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추진 방안¹⁾**

-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의하면, 변호인은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검찰에서는 내부규칙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운영지침'**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를 참관할 수 있을 뿐, 피의자와 변호인이 **수시로 상의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음 ⇨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참여권의 범위를 법률 내지 규칙 등에 명문화**하는 방안

▶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신문과정에서의 필요적 참여 제도**

-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의하면, 변호인은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우선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의 필요적 참여 제도**

1) 2014. 12. 3.자 한국경제 '검·변, 피의자신문때 변호인 참여 범위 놓고 '힘겨루기' 기사 참조



를 도입하는 방안

[회유 방안]

▶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확대 방안

- 최근 검찰은 공안사건에서 **작성명이 불명확한 디지털증거(ex. 북한으로부터 수신된 이메일)**의 성립진정 인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 ⇨ 증거법 개정 주장 제기
- 위와 같은 증거의 성립진정 인정에 관한 **새로운 기준** 마련 ⇨ '反테러법'과 같이 공안사건에 특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입법 과정에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

- 검찰의 이른바 '**안보위해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요청
- 공안사건에 대한 법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건 처리의 **일관성·효율성** 도모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법원에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 등에 관한 전담 재판부 설치

▶ 특성화법원 설치 방안

- 검찰의 이른바 '**중점 검찰청 설치 방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방안 (2011. 7. 정부 제출 형소법개정안)

- 범죄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구인영장 발부받아 강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협조

▶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 도입 방안 (2011. 7. 정부 제출 형소법개정안)

- 뇌물범죄, 범죄단체 조직범죄 등에 대하여 **범죄 가담자가 범죄규명에 필수적 증언**을 한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협조

- [끝]



상고법원 신문·방송 홍보전략2 (지역지·종편)

2015. 6. 8.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전통매체인 **중앙 일간지·지상파 방송** 상대 홍보역량 집중한 결과 최근 상당수 매체에서 우호적 기사 게재 ⇨ 여세를 몰아 **다른 영역의 매체로 확산시킴**으로써 '대세론'이 자리잡도록 할 필요 있음
- **지방 유력언론 및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체계적 홍보전략 부재 ⇨ 매체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 전략 수립 필요**
 - 지역지의 경우 법안 통과에 영향력이 큰 **법사위의 반대파 위원 지역구를 집중 공략**할 필요 ⇨ **중앙지와 함께 전방위 압박 기능**
 -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한정된 시사평론 패널이 반복 출연 ⇨ **주요 패널을 포섭 및 활용**할 필요

2. 지방 유력지 홍보 방안

- **추진 방향** ⇨ 기고, 기사보다 **사실 또는 데스크의 사내 칼럼** 추진
 - ①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단기간에 지역구 의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목적** ⇨ 기사 또는 외부 기고만으로는 미흡
 - ② 2014. 9. 상고법원 공청회 무렵 각급 법원 통해 유력 지역지에 상고법원 **찬성 기고문 일제히 게재** ⇨ **진일보된 수위의 압박 필요**
 - ③ 조선 1면 기사 및 동아 여론조사 등으로 지역에서도 상고법원 이슈에 관심↑ ⇨ 법원이 일방적으로 우호적 기사 요청하는 상황과 구별됨
 - ④ 지방검찰청 단위에서는 상고법원 반대 행동 미미함 ⇨ 단 지역별로 **지방변호사회와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지역지** 있음을 고려



▣ 법사위 상고법원 반대 의원 현황

☑ 6. 4.자 뉴시스 '상고법원 관련 법사위원 전수조사' 결과 보도

- ▶ 16명 중 반대 3명 ⇨ 새누리 김도읍, 김진태, 정의당 서기호
- ▶ 찬성 5명 ⇨ 새누리 홍일표, 이병석, 김재경, 새정치 박지원, 임내현
- ▶ 유보(개선 필요 인정하나 국민공감대 미형성 및 신중 검토 필요) 8명 ⇨ 새누리 정갑윤, 이한성, 노철래, 새정치 이상민, 우윤근, 이춘석, 전해철, 서영교
- ▶ 김진태, '현행 제도 내에서 재판을 잘할 방안을 찾아야 함. 상고법원 설치는 오히려 사실심 충실화에 역행할 우려' ⇨ **명분은 사실심 충실화론, 실제로는 검찰 측 반대론의 영향**
- ▶ 이한성, '아직 여론이 분분하고 논의 덜 된 측면 있음. 대법원의 입장은 이해되나 시간이 더 필요' ⇨ 간사로서 중립적 발언이나, 반대 가능성 높아 압박 필요

● 분석

- 유보 입장 중 정갑윤, 우윤근 의원은 실제 찬성, 유보 입장 중 이한성, 전해철 의원은 반대 예상 ⇨ **반대파 중 지역구 의원인 이한성, 김진태, 김도읍, 전해철 의원에 대한 공략 방안 검토**

▣ 이한성 간사 지역구(문경예천) 검토

● [대상] 매일신문 ⇨ 지역에 영향력이 매우 큼

- 유료발행부수 약 10만부로서 세계일보보다 많고, 서울신문과 비슷한 수준
-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소유**로서 **여○○ 신부가 사장**직을 맡고 있음

☑ 매일신문 상고법원 관련 보도 동향

▶ 15. 6. 11. 사설 '상고법원은 법원 역사 깊은 대구에 설치해야'

'대법관 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 국민 편의를 위해 상고법원 설치는 꼭 필요하다 ... 국토 균형 발전과 사법 지방분권, 법률심이어서 지방에 설치해도 국민 불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지방에 설치해야 하고, 제1순위는 법원 역사가 오랜 대구여야 한다'

▶ 14. 9. 25. 함○○ 전 경북대 총장 '상고법원과 법치주의' 기고 (법원 기획)

'(9. 24. 상고법원 공청회에서 논의된 안은) 대법원의 업무경감뿐만 아니라, 상고심리 충실화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확고하게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 [형태 및 수위] '신속 입법 촉구' 사설 게재 추진

- 법원에 매우 우호적이고, 상호 고위급간 교류 및 신뢰관계 돈독 ⇨ 지면 확보, 보도 형태 결정 및 수위 조절 등에 큰 어려움 없음

☑ 매일신문과 대구경북 지역 법조의 관계

- ▶ 매일신문 여○○ 사장, 2014. 10. 대구지법 제2호 명예법관(제1호는 함○○ 전 경북대 총장)으로 임명 + 법원장 등과 사석에서 신뢰관계 유지
- ▶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설문조사결과 상고법원 찬성률 70% 이상으로 변호사회도 반대 명분 없음
- ▶ 대구검찰의 경우 현 간부진과 기자단 갈등 상황 (1차장 검사는 기자에 적대적, 2차장과 검사장은 기자단과 소통 노력 없고, 정보제공 없어 기자단 반발)

- ① 6. 11.자 사설의 취지가 '대구에 설치하지 않는 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되, 대구 설치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고, ② 국민을 위해 '최대한 빨리 설치되어야 한다'는 수위의 사설 게재 추진

● [접촉 방법] 사설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장 또는 논설주간 등과 접촉 ⇨ 법원장, 수석부장 등 역할 필요

● [시기적 고려]

- ① 지역지 사설의 파급효과 중앙 일간지처럼 바로 나타나기는 어려움 ⇨ 법사위 일정 등 고려할 필요 없이 조기에 추진함이 상당함
- ② 하○○ 대한변협 회장의 대구변회 방문일 6. 9. ⇨ 대구변회 입장을 고려할 때 그 이후 추진함이 적정함

● [기타] 지역구 담당 기자 활용 여부 ⇨ 신중

- 이한성 의원의 지역구를 전담하는 고○○ 기자(문경예천상주 담당) ⇨ 법원에 우호적이고 신문사 내 입지도 있음
- 사설 외에 의원 지역구 담당 기자의 측면 지원 기사로 이중 압박 방안 검토 가능 ⇨ 작위적인 압박으로 의원측 반발 가능성 있고, 보안 유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신중 검토



■ 김진태 의원 지역구(춘천) 검토

● [대상] ①강원일보, ②강원도민일보

- ①:②의 유료발행부수는 5:4 정도(40100:33200), 역사는 60년:20년 정도임
- ①강원일보는 동부그룹이 대주주로서 현재 강원일보에서 40년간 기자로 근무한 이○○이 대표이사임
- ②강원도민일보는 강원일보에서 해직된 기자 및 데스크가 중심이 되어 설립, 기자 출신인 안○○이 회장, 김○○이 사장임
- 강원일보 우선 추진하면서 경과에 따라 강원도민일보 추가 추진 검토

☑ 강원춘천 지역지 상고법원 관련 보도 동향

- ▶ 강원일보, 14. 10. 8. 김○○ 강원대 법전원 교수의 상고법원 지지 기고(법원기획)
- ▶ 강원도민일보, 15. 5. 25. 각 지역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대한 찬반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강원변호사회도 내부 의견이 갈려 최종입장에 관심이 쏠린다는 간단한 기사 게재 ⇨ 실제 강원변회 회장단은 상고법원에 우호적임
- ▶ 그 외에는 일체의 보도 없음
- ▶ 현재 ①강원일보에는 강원 관내 법관들이 돌아가며 매월 1회 '법정에서 만난 세상' 코너에, ②강원도민일보에는 춘천지법 공보관(이○○ 판사)이 매월 1회 '오피니언'란에 각 기고 중임

● [형태 및 수위] **우호적 사설 또는 사내 칼럼** 추진

- 법조 모두와 원만한 관계 ⇨ 법원과 특별히 긴밀한 것은 아니나, 강원 변회 및 검찰 모두 상고법원에 적극 반대하지는 아니하므로, 사설이나 사내 칼럼 가능성 있음
- ① 상고법원의 신속 입법을 촉구하는 수위의 글을 타진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②상고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전제로 상고법원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되 장점이 더 많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수위로 추진

● [접촉 방법] 사설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장, 이사, 논설주간 등과 접촉 ⇨ 법원장, 수석부장 등 역할 필요



▣ 김도읍 의원 지역구(부산 강서구을) 검토

● [대상] ①부산일보, ②국제신문 ⇨ ②국제신문 타당

- 발행부수는 11만:7만으로 부산일보(지방지 최대)가 많으나, 아래에서 보듯 **부산일보는 상고법원에 매우 적대적인 사설 등을 게재**하였음 ⇨ 우호적 사설이나 사내 칼럼 실현 가능성 낮아 보임

☑ 부산일보 상고법원 관련 보도 동향

- ▶ 14. 9. 26. 송○○ 동아대 교수 '상고법원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기고 (법원기획)
- ▶ 14. 9. 30. **[사설] "상고법원 서울만 설치하겠다는 발상 어이없다"**
 -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서울에만 두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 '서울에만 두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안일한 판단으로 지역간 사법 복지 불균형이라는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 ▶ 상고법원 서울설치에 반대하는 지역법조,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기사가 14. 9. 30.부터 1주일간 4건
- ▶ 14. 10. 13. 부산변회 부회장 기고, '**대법관 대폭 증원이 우선**이고, 안되면 고등법원별로 상고법원 설치해야 한다'
- ▶ 이후 지역변회, 시민단체 및 대한변협 주장 소개하는 기사 및 인터뷰 다수 + **상고심 필수적 변호사 제도에도 반대**, 반면 상고법원 찬성 취지 기사 전혀 없음

☑ 국제신문 상고법원 관련 보도 동향

- ▶ 14. 9. 23. 김○○ 부산대 교수, 상고법원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기고 (법원기획)
- ▶ 14. 10.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 국감에서 "지리적 위치, 사법서비스 수요 등을 감안해 지방에 상고법원 추가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기사화
- ▶ 부산변회 및 경남변회 회장 취임 인터뷰, 부울경 변회 반대 성명 등 소개하는 단신 기사 가끔 있음(기사 문체는 중립적)

- ①부산일보는 정수장학회 소유로서, 부산일보 기자 출신 안○○이 사장임
- ②국제신문은 1999년 롯데그룹에서 분리된 후 독자경영, 다양한 기업 및 방통위 등 경험있는 **전문경영인 차○○이 사장**

● [형태 및 수위] '상고법원의 장점을 소개하는 사내 또는 전문가 칼럼' 추진

- 부산변회의 영향 등으로 **상고법원에 적극 찬성**하기는 어려움(국제신문)



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지방변회와 입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파악됨)
 ⇨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설득을 통해 우호적으로 포섭할 필요

- 사내 칼럼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 칼럼 또는 외부 기고 고려

☑ 국제신문 고정 칼럼 집필자

- ▶ 논설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집필하는 '도청도설', '국제칼럼'
- ▶ 사내 칼럼에는 '데스크시각', '기자수첩', '뉴스와 현장'이 있음
- ▶ 외부 전문가 칼럼 가운데 유일한 법조인으로 천○○ 부장판사 ⇨ 월 1회
- ▶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가운데 유일한 법조인으로 권○○ 변호사(○○기) ⇨ 월 1회 옴부즈맨 칼럼
- ▶ 집필진 수가 매우 많은 편이나, 위 인사 외에는 법조인 또는 상고법원 언급할 만한 지위의 인사 없음(각 분야 전문가들이 필진이고, 사회 원로 등은 드뭄)
- ▶ 1회성 외부 기고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14. 9. 칼럼은 다소 소극적 지지(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정도) ⇨ ① 상고제도를 개선할 절박한 필요성과 ② 상고법원 도입시 장점 및 가능한 대안 중 최선이라는 점이 부각되는 내용으로 구성

- 부산지역의 강한 반발 고려하여, 상고법원 도입·정착 후 지방분권시대의 취지를 고려한 구조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언급 가능 ⇨ 부산지역의 '원칙적 반대' 기조를 '조건부 찬성' 기조로 완화·전환 시도

● [접촉방법] 법조기자 또는 데스크 ⇨ 수석부장, 공보관 등이 접촉 가능

● [시기] 6. 6. 전국지방변회장 협의회 개최 후 바로 추진

▣ 전해철 의원 지역구(안산시 상록구갑) ⇨ **영향력 있는 지역지 없음**

● ① 수도권이어서 중앙 언론의 영향이 크고, ② 특히 안산시의 경우 시청 브리핑룸 반복 폐쇄 등으로 지역언론은 안산타임즈 정도 외에는 존재감 없고, 안산타임즈도 영향력 미미함

● 중앙일간지, 지상파 및 종편 등 다른 매체 통해 압박함이 효율적

3. 종편 홍보 방안

▣ **종편 채널의 특징**



- 시사 및 정치 평론 패널들이 맹활약 ⇨ 뉴스, 토론, 시사, 예능 프로 구분 없이 출연 (제작비 절감 + 지상파와의 차별화 등)
- 방송에 적합한 인기 패널 한정 ⇨ 특정 패널들이 반복 출연
- ⇨ 활발하게 활동 중인 패널 중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상고법원 우호 세력 포섭 필요

▣ 패널 포섭 방식의 장점

- ① 포섭 효과가 특정 프로그램에 한정되지 않음 ⇨ 패널이 참여하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에서 이슈화 가능
- ② 종편 시청자들의 특정 패널에 대한 몰입도 매우 높음 ⇨ 패널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과 동일시할 가능성 큼
- ③ 종편의 특성상 다소 정제되지 아니한 표현도 과감히 사용 ⇨ 논리적 접근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접근 가능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소 거친 비유로 이해시키는 등의 장점 ∴ 직관적·감정적 이해를 선호하는 대중의 기호에 부합

▣ 종편 주요 패널 중 법조 관련자 명단

성명	경력 등	주요 출연 채널	비고
김○○	변호사	TV 조선, JTBC, 채널 A, YTN, MBN 등	
여○○	변호사	TV 조선, JTBC, 채널 A, YTN, MBN 등	
정○○	변호사	TV 조선, JTBC, YTN, MBN 등	
양○○	변호사	TV 조선, JTBC, MBN 등	여성
백○○	변호사	TV 조선, YTN, MBN 등	
장○○	변호사, 참여연대	JTBC, MBN 등	
양○○	변호사	YTN, MBN 등	
손○○	변호사, 진보성향	TV 조선, 채널A, YTN	
김○○	변호사, 검찰출신	JTBC, YTN, MBN 등	
박○○	변호사	채널 A, YTN, MBN 등	
최○○	변호사, 대한변협 대변인	TV 조선, YTN, MBN 등	
그 외 강○○, 전○○, 강○○ 변호사 등			

- 정○○ 등 검찰 색채 강한 변호사 제외 / 35세 미만, 70세 이상 제외



■ 검토 및 추진방향

- ①논리를 내세우는 인사와 ②친근한 느낌의 인사를 모두 포괄할 필요
- ⇨ ①항에 해당하는 여○○, 백○○ 등과 ②항에 해당하는 강○○, 박○○, 양○○ 등 검토 필요
- 상고법원 도입 **기정사실화 및 대세론 확산에 활용**
 - ①반복 노출 + ②과감한 비유 및 표현 + ③시청자의 몰입도 등 **중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방위적으로 상고법원 지지 분위기 고조

■ 참고사항

- 중편 중 지상파 뉴스의 영향력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는 JTBC 메인 뉴스 '뉴스룸'을 비롯한 3대 주요 뉴스 활용 방안 ⇨ **기획보도 집중편성하여 6월 중순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방송**
- 상고법원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과 대세론 확산에 방점**이 될 수 있도록 함
- 접촉방안 및 진행상황

	접촉 방안	비고
KBS 9시 뉴스	KBS 이사진 통하여 강○○ 보도본부장과 교섭	긍정 답변
JTBC 뉴스룸(8시)	주말 앵커인 전○○ 사회부장 교섭	메르스 진정 후 우호적 보도 가능하다는 답변
SBS 8 뉴스	기조실장이 조만간 방○○ 보도국장 접촉 예정	

[끝]



상고법원 관련 대외적 대응 전략

2015. 1. .

기획조정실

I. 대응 기본 방향

1. 논의 프레임 재설계

가. 현황

- 초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상고법원 의결 이후 상고법원의 필요성, 상고법원안 자체에 대하여 관심이 높았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대법원의 청부입법 논란, 대법원 구성 다양화 논란, 대한변협의 상고법원 반대 설문조사결과 등 **상고법원 반대세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
- 이러한 현재의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찬성 VS 반대” 프레임**을, 상고법원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따른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기정사실화” 프레임으로 변경할 필요 있음**

나. 대응 전략

▣ 대응 내용

- **①상고법원의 도입에 따른 변화의 (부정확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치 제시**
 - 상고심 심리기간의 단축 정도,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예상 담당 사건 건수, 4심제 논란 관련하여 특별상고가 받아들여질 비율 등
- **②상고법원 재판의 구체적 운영 모습 제시**
 - 충실한 재판 관련 상고심 변론의 확대, 전문재판부에 의한 전문성 강화 /



판결 이유 설명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례 제시

- ③상고법원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관련 연구용역발주 및 제시
 - 비교적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경제 관련 연구소에 상고법원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함
- ④이미 발의된 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한 논의 내용 공개
 - 대법원 심판사건 관련 필수적 심판사건 추가 방안, 심사기준 세분화 방안, 필요적 변론 방안 등

■ 대응 방법

- ①상고법원에 우호적인 언론 접촉 ⇨ ‘상고법원 도입 이후 달라지는 것들’ 특집 기사 요청
 - 구체적 사례 수집 및 수치 제시 필요
- ②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신문기고
 - 조○○ 교수, 박○○ 교수 등 진보적 인사 ⇨ 기본 취지에 공감하나, (법원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재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그 외 인사 ⇨ 상고법원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제시

II. 기관별 대응 전략

1. 국회 전문위원실 대응 · 설명

■ 남○○ 수석전문위원, 강○○ 전문위원실

- 전문위원 ⇨ 정책실장 면담 및 설명
- 이○○(형사소송법), 전○○(민사소송법) 입법조사관 ⇨ 나○○, 김○○ 심의관, 김○○ 국회 파견 판사 개별적 설명

■ 정○○ 후임 전문위원실



- 현재 공석이나, 조만간 3급에서 2급 승진자가 올 예정 (1. 6. 진급심사 실시)
- 후임 전문위원 성향 파악하여, 성향에 따라 소속 강○○(법원조직법) 입법조사관과 함께 설명할지, 다른 전문위원실 같이 입법조사관과 분리하여 대응·설명할지 결정

2. 국회 법사위 설명

▣ 법사위원 설명

▣ 보좌진 설명

- 既 설명 ⇨ 홍일표, 정갑윤, 김도읍, 노철래, 이병석, 전해철, 임내현 의원실
- 未 설명 ⇨ 김진태, 박민식, 이한성, 이상민, 박지원, 우윤근, 서영교, 이춘석, 서기호 의원실

3. 법무부 대응

가. 현황

▣ 반대 입장의 구심점

- 각종 궤변적 논리를 늘어놓으며 전 방위적으로 방해 전술 구사
 - ex. ‘대법원의 기득권 수호 의도’, ‘국민주권 원리에 반함’ 등

☑ 반대의 주요 원인

- ▶ 형사사법 주도권 상실 우려
- ▶ 법원 영향력 지속적 강화에 대한 견제 심리 발동

나. 대응전략

▣ ①강은強穩 양면 전략 필요



- [대응 방향 기초] ①전선 형성의 확대는 지양, ②약한 고리에 대하여는 총력 돌파 전략, ③강한 고리에 대하여는 협상을 추진 ⇨ 양동 작전 구사

▣ [2]범 실·국 차원 전술 모색 필요

- 돌파와 협상을 위한 다양한 카드[아이템] 발굴 필요
 - 범 실·국 차원에서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고 협업에 나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4. 대한변협 대응

▣ 협회장 선거 판세 전망

- [하] 30%내외 > [소] 25%내외 > [박] 15%내외 > [차] 5~10%
 - 1차 투표에서 하○○ 후보가 1/3 이상 득표시 ⇨ 하○○ 후보 승리
 - 결선 투표까지 갈 경우 ⇨ 소○○ 후보 유리

▣ 상고법원 관련 후보별 부합 정도 ⇨ 차○○ > 소○○ > 박○○ > 하○○

- 차○○ 후보 : 대법원 추진 상고법원안 지지
- 소○○ 후보 : 원칙적 찬성 +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지방 분권 설치 주장, 대법원 이원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 박○○ 후보 : 원칙적 반대(대법관 증원론 지지) + 차선으로 상고법원 설치 시 지방 분권 설치 주장
- 하○○ 후보 : 반대(대법관 증원론 지지, 대법관 증원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강경한 반대 입장)

▣ 향후 계획

- 1. 12.(월) 1차 투표 및 1. 19.(월) 결선투표 실시
- 신임 협회장의 성향 분석 및 그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



5. 기재부 대응

■ 현황

- 기재부 대응하기엔 아직 입법 논의 미성숙

■ 향후 계획

- 입법 논의 본격화 이후 “국가 재정 부담 최소화” 강조하여 설득
 - 인적 ⇨ 재판연구관 공유 등
 - 물적 ⇨ 도서관 이관 후 대법원 청사 여유공간 활용

6. 헌법재판소 대응

■ 현황

- ‘상고법원’ 관련 특이한 동향은 파악되지 않음
 - 다만, 대법원이 헌재와의 관계를 의식하여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고려할 때, 헌재가 물밑 움직임에 나설 수 있음

■ 향후 계획

- 헌재의 동향에 대한 면밀한 파악 및 특이 동향 파악시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상고법원 공동 발의 가능 국회의원 명단 및 설득 전략

2014. 10. .

기획조정실

1. 개요

- 발의형태 ⇨ 여야 간사 공동발의 방안 추진
- 발의안 서명 확보 ⇨ 100명 이상 목표
- 발의시기 ⇨ 2014. 10.말경

2. 공동 발의 가능 국회의원

☑ 국회의원 Pool 선정 기준

- ☞ 역대 법사위 출신 의원
- ☞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 ☞ 법원행정처 실국장(전·현직)과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 ☞ 다른 의원 설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호적이면서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 파악(ex. 나경원 의원 등)

가. '개연성' 그룹 (46)

■ 새누리당 (24)

- 권성동, 김기현, 김도읍,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훈, 김진태, 김학용, 김희선, 나경원, 노철래, 신성범, 유기준, 윤상현, 이병석, 이정현, 이철우, 이한성, 정갑윤, 조해진, 주호영(양형, 지원), 진영, 홍일표

☑ 정갑윤 위원 대법원 국정감사시 발언 ⇨ 찬성

- ☞ 상고법원 설치되어야 함

☑ 노철래 위원 대법원 국정감사시 발언

- ☞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한 위헌 소지 없는지 검토 필요
- ☞ 하급심 강화 필요

☑ 김도읍 위원 대법원 국정감사시 발언

- ☞ 상고법원 지역 설치 고려 필요
- ☞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의 문제, 4심제 우려, 사건 분류에서의 형평성 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



☞ 상고법원안은 사실상 상고허가제라고 보임

☑ 이한성 위원 대법원 국정감사시 발언

☞ 상고법원이 최종심이 되면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니 검토해야 할 것

☞ 상고제도 개선에 앞서 판사 책임용 절차의 엄격한 운영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 **새정치민주연합 (21)**

- 김관영, 문병호(양형), 박민수¹⁾(등기),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양승조, 우윤근, 이상민, 이언주, 이원욱²⁾(지원), 이종걸, 이춘석, 임내현, 전해철, 정성호(양형), 조정식³⁾(지원), 전정희⁴⁾(등기), 최원식, 최재천

☑ 박지원 위원 대법원 국정감사시 발언 ⇨ 찬성

☞ 기본적으로 찬성함

☞ 고위 법관 자리늘리기라는 오해 해소, 하급심 신뢰, 대법관 다양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 전해철 위원 대법원 국정감사시 발언

☞ 상고법원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으나, 대법원 다양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상고법원은 시기상조라고 봄

■ **무소속 (1)**

- 박주선(양형)

나. **“가능성” 그룹 (12)**

■ **새누리당 (8)**

- 김상훈, 김용남(기총, 인총, 홍보), 김을동, 박대출⁵⁾(지원총괄), 박민식, 원유철(지원), 장윤석, 정미경(지원)

☑ 박민식 위원 대법원 국정감사시 발언

☞ 대법관 소수 증원 필요

☞ 상고제도 개선에 앞서 대법관 다양화 및 하급심 강화가 이루어야 할 것

☞ 지방 불만 : 사법서비스라는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1) 고려대 법대 법학과 졸업 / 노무현대단 전북위원회 운영위원
 2) 고려대 법대 법학과 4년 졸업 / 노무현대단 기획위원
 3)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 / 새정치 경기도당위원장
 4) 전북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 전북대 겸임 교수
 5) 연세대 행정대학원 외교안보전공 졸업 /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3)

- 김동철, 송호창, 신경민

■ 통합진보당 (1)

- 이상규(지원)

3. 주요 설득 거점 의원

■ 새누리당

- 권성동, 김재원, 김학용, 김희선, 나경원, 노철래, 유기준, 윤상현, 이병석, 이정현, 정갑윤, 주호영, 홍일표 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양승조, 우윤근, 최원식, 최재천

4. 공동 발의 설득 전략 등

가. 설명 전략 수립 : 맞춤형 설명자료 작성, 친분관계 활용

■ 정당, 직역 이해관계, 정치적 입장, 지역구 등에 따른 개인적 입장에 맞는 전략 수립 및 설명자료 작성

- 논리적 근거 뿐 아니라 정서적 호소와 설득, 현실적·사실적 효과, 친분관계 및 의원 이해관계 적극 활용
- 동일한 비판에 대해 반박하거나 동일한 대안의 단점을 지적하는 경우에도 의원에 따라 다른 논거 제시 필요

- ① 여야 맞춤형 설득 전략

- [對 여당] 상고법원, 대법원 재판은 경륜있는 상고법관, 대법관의 합의를 전제로 함 ⇨ 대법관증원, 대법원 이원적 구성안보다 상고심 법관의 ‘개인적 성향’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결론을 막고 안정 속에 점진적인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 [對 야당] 상고법원 설치를 통해 대법원의 실질적인 다양성 보장, 진보·소수



자 성향 대법관의 자유로운 소수의견 개진 가능성 및 관례 변경 가능성 보
장 ⇨ 대법원의 정책기능 강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두텁
게 보장

- ② 상고법원의 충실하고 빠른 심리를 통해 일반 상고사건에서 국민의 권
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 ⇨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면서 더 충실하고
빠른 심리 가능
- ③ 상고법원 운영 방법에 따라서 평생법관제 정착 가능 ⇨ 전관예우 해소
에 기여할 수 있음
- 조선일보 설문조사에 대하여 조건부 찬성 의견을 표시한 의원들 및 해
당 조건의 내용 파악 필요
- 기고문, 법조 논문, 신문 기획기사, 공청회 결과 중 중요하고 유리한
부분 정리, 발췌 작업 진행

나. 개별적 설득 작업 진행

- 사전 설명 및 설득 작업 계속 진행
- 법안 최종 형태 마련되면 본격적 서명 작업 진행

5. 향후 계획

- 공동발의 가능 국회의원별 전담 실·국장 등 배치
- 전담 실·국장 등의 개별적 접촉 및 설득 작업 진행



상고법원 입법 추진 관련 검토사항

2014. 10. .

기획조정실

1. 검토배경

- 2014. 6.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상고법원 도입방안을 건의함에 따라, 법원행정처 내에 상고법원 입법 추진 TFT를 2원적으로 구성·운영해옴
 - ①법안성안팀 ⇨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 ②대응전략팀 ⇨ 맞춤형 설득 전략 수립 및 언론 기고문 작성 등
- 2014. 9.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2014. 10. 법원장 간담회, 지역변호사협회 성명, 언론 기사 등 내·외부 의견수렴과정에서 나타난 상고법원 관련 검토사항 등을 정리하여 면밀히 점검 필요 ⇨ 상고법원 입법 추진 동력 지속적 확보
 - 향후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2. 권역별 지부 설치 대응 [정책실]

- 대법원 내 설치
- 세종시 설치
- 기재부 활용 (지부 설치에 따른 재정부담)

3. 입법 추진 방식 [기조실 + 정책실]

가. 제1안: 의원 입법

- 장점
 - 여야 의원 공동 발의할 경우 법사위와 본회의 부결 사태 방지 가능



- 대법원의 원안 유지 가능
- 발의한 의원 책임감 있는 추진으로 비교적 빠르게 입법화 가능

■ 단점

- 전체 심급 구조 및 사법 제도 근간에 관련되는 개편 사항으로 개별 의원이 발의하기에는 비중이 너무 큼
- 사법부 주도의 적극적인 사전 정지 작업 곤란
 - 대법원 명의로 적극적 사전 설득 등 진행 곤란
-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무부 등의 반대 예상
 - 특히 법률안의 내용 여부를 떠나 입법 추진 방식에 반발 가능성

나. 제2안: 정부 입법

■ 장점

- 법무부와 조율 통하여 사전에 마찰 우려 최소화
 - 특히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설치 등으로 추진 동기 부여 가능
- 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조 용이할 수 있음

■ 단점

- 추진의 주도권 상실 및 사법부 원안 변경 우려
 - 법무부 심의 절차 중 변협,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 소수 증원 등으로 방향이 왜곡될 우려
- 신속한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

4. 법무부 설득 방안 [기조실 + 정책실]

■ 법무부장관 면담·설명

- 법무부에 대한 정보제공범위 관련 정책결정 우선 필요



- 상고법원 대상 사건에서 형사사건을 제외하는 방안
- 상고법원에 전문부로서의 형사부를 설치하고, 검사 출신 법관을 임용하는 방안

5. 기재부 설득 방안 [기조실]

- 필요 인원 및 시설 규모에 따른 소요예산 개산

- 필요 인원

- 상고법관 수(안) 24명 (6개 재판부)
- 재판연구관 수 미정
 - 연구관실과 공동조, 전속조 등 연구관 재배치 등 협의 필요
- 법원 직원 수 미정 (조직심의관실에 필요 법원 직원 및 그에 따른 인건비 개산 요청)

☑ 수원고법 설치 관련 법안 비용추계서 항목

- ☞ 수원고법 규모
 - 적정 재판부 수
- ☞ 수원고법 신설에 따른 인건비
 - 판사 인건비
 - 법원 직원 인건비
- ☞ 수원고법 청사 신축비
 - 청사 규모
 - 건축 공사비
- ☞ 자산 취득비
- ☞ 운영비 (인건비 30%)
- ☞ 이전비

- 필요 시설 규모

- 현 단계에서는 대법원 청사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중
- 다만, 대법원 청사 외형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 규모 증축 방안, 대법원 청사 좌측 후면에 온실 공간 활용 신축 방안 등 추가 검토 필요

- 기재부 접촉 및 설명



6. 국회 설득 방안 [각 실국]

가. 국회의원

1) 개요

간부		법사위원(16명) 11. 3.(월)~11. 14.(금)	非 법사위원(44명) 11. 3.(월)~11. 21.(금)
차장님			김제식, 김동철, 장병완, 김을동
기조 실장	여당	홍일표, 정갑윤, 이병석, 노철래, 이한성, 박민식(기총), 김도읍(기 총)	김회선, 김학용, 이완구, 박덕흠, 유기준, 여상규, 윤영석, 이철우, 이정현, 주호영(전정국장), 김재원 (전정국장)
	야당	이상민, 박지원, 이춘석(등기)	박영선, 신경민, 최재성, 박범계, 이해찬, 양승조, 신학용
지원 실장	여당		윤상현, 원유철, 정미경, 권성동
	야당	전해철, 서영교, 임내현, 서기호 (등기)	조정식
정책 실장	여당		나경원, 조해진(전정국장)
	야당		정세균
양형 실장	여당	김진태	최원식
	야당	우윤근(인총)	문병호, 정성호, 최재천
등기 국장	야당		유성엽, 박민수, 이상직
기획 총괄	여당		김용남
공보관	여당		김기선, 이강후
임○○	여당		김재경, 신성범
정○○	여당		김용태
장○○	여당		이연주

※ 파란색 글씨는 주요 설득 거점 의원임

2) 법사위원

■ 1:1 매칭



	의원	지역구	상고법원 의견	살국장
여당	홍일표	인천남구갑	의견 표명 X	기조
	정갑윤	울산중구	찬성	"
	이병석	포항북구	의견 표명 X	"
	노철래	경기광주	위헌, 하급심강화	"
	이한성	문경예천	위헌, 사법신뢰강화(엄격한 재임용절차 운영)	"
	박민식	부산북강서갑	지부 설치, 대법관 3~5명 증원	기조+기총
	김도읍	부산북강서을	지부 설치, 위헌, 4심제, 사건분류 형평성, 각급 법원의 의견 미반영 등	기조+기총
	김진태	춘천	의견 표명 X	양형
야당	이상민	대전유성구	의견 표명 X	기조
	전해철	안산상록갑	취지에 찬성 (단, 대법관 다양성 부족, 시기상조)	지원
	박지원	목포	찬성 (단, 자리늘리기 오해, 대법관 다양화)	기조
	우윤근	광양구례	의견 표명 X	양형+인총
	서영교	중랑구갑	의견 표명 X	지원
	이춘석	익산시갑	의견 표명 X	기조+등기
	임내현	광주북구을	의견 표명 X	지원
	서기호	비례대표	반대 취지(법원 필요에 의한 방안 불과, 조선일보 설문조사에서도 반대)	지원+등기

■ 시기

- 11. 3.(월) ~ 11. 14.(금)

■ 설득전략

- 여야 의원별 맞춤형 설명자료 작성 [정책실]

3) 공동발의 서명 가능한 국회의원

■ 친분관계에 따른 1:1 매칭 ⇨ 위 1) 개요 참고

■ 시기

- 11. 3.(월) ~ 11. 21.(금)

■ 설득 전략



● ①주요 설득 거점 의원 집중 공략

지위	당	이름	실·국장	
의장단	여당	정갑윤	기조	
주요 당직자	여당	이완구(원내대표)	기조	
		김재원(원내수석부대표)	기조	
		주호영(정책위의장)	기조	
	야당	우윤근(원내대표)	양형	
중진 및 영향력 보유	여당	권성동	지원	
		김학용	기조	
		김희선	기조	
		나경원	정책	
		노철래	기조	
		유기준	기조	
		윤상현	지원	
		이병석	기조	
	야당	이정현	기조	
		박범계	기조	
		박영선	기조	
		박지원	기조	
		양승조	기조	
		우윤근	양형	
계과수장	여당	최원식	기조	
		최재천	양형	
지 방 권	강원	여당	김기선, 이강후	공보관
	대구	여당	주호영	기조+전정
	경북	여당	김재원, 이병석	기조
	경남	여당	김재경, 신성범, 여상규, 윤영석	기조
	전남	야당	박지원	기조
	전북	야당	유성엽, 박민수, 이상직	등기
	광주	야당	김동철, 장병완	차장

● ②행정처 전직 실·국장·심의관 등의 지원

- 이○○ 전 정책실장 등 추가 친분관계 확인

● ③지원장(지역 선관위원장)의 측면 지원



- [사법정책실] 법원장에게 상고법원안 자료 송부
- [법원장] 관내 지원장에게 위 자료 송부 및 적극적 역할 수행 독려
- [지원장]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상고법원안에 대한 개략적 설명과 함께 공동발의 서명 부탁

나. 법사위 국회의원 보좌관

▣ 여·야 보좌진 나누어 설명회 2회 개최

- 여·야 각 간사실의 보좌관에게 사전 요청하여 일정을 정함

여당 의원	보좌관	일시	야당 의원	보좌관	일시
홍일표	박○○		이상민	박○○	
정갑윤	김○○		전해철	오○○	
김도읍	기○○		박지원	김○○	
김진태	김○○		우윤근	정○○	
노철래	엄○○		서영교	홍○○	
박민식	류○○		이춘석	강○○	
이병석	김○○		임내현	도○○	
이한성	장○○		서기호	정○○	

▣ 보좌진 개별 설명 병행

- 기획제1심의관, 기획제2심의관, 김○○ 심의관 등 담당

다. 법사위 전문위원

▣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

- 임○○ 수석전문위원실, 강○○, 심○○ 전문위원실
 -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행정처 간부 1:1 매칭
 - 3개실 입법조사관 ⇨ 심의관 설명
- 정○○ 전문위원실



-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자리에서, 실장님, 국장님, 심의관이 참석하여 설명

● 요약표

전문위원실	분류	담당 간부 등	일시
임○○ 수석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¹⁾	심의관	
강○○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²⁾	심의관	
정○○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입법조사관 ³⁾		
심○○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⁴⁾	심의관	

라. [참고] 발의시 PT 설명기회 확보

- ▣ 위원장, 양당 간사 양해 하에 법률안 심사 전체회의시 설명기회 확보

1) 이○○(4급), 방○○(5), 이○○(5), 최○○(5), 경○○(6)

2) 전○○(4급), 전○○(5), 성○○(6)

3) 강○○(5급), 최○○(5), 이○○(5), 오○○(5)

4) 조○○(4급), 표○○(5), 백○○(5)



상고법원안 입법추진(발의) 방안

2014. 9. 1.

상고법원 TF

1. 국회 입법추진절차 개요

- 발의 ⇨ 여야 간사 공동발의 방안 추진
- 발의안 서명 확보 : 100명 이상 목표 ⇨ 명단 작성(기획1실)
- 발의 후 예상과정 전망 ⇨ 국회 파견판사
- 발의 후 각 과정에서의 전략 추진 ⇨ TF 추후 논의

2. 발의 형태

- 대법원안을 여야 간사 합의안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
 - 단순 의원 발의, 입법예건 제출, 정부 입법 모두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주도하기에는 각자 문제점이 있는 방안임
 - 현 단계부터 정치권에 사법부 방안의 장점을 설득하면서 입법 가능성 타진할 수 있음
 - 정치권 입장을 반영하면서 합의안 제출 추진 : 여야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상황
- 여야의 전체적 합의 도출 ⇨ 설득을 위한 전략 필요
 - 세월호특별법 정국 진정 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본격적 설득 및 요청 진행
 - 유가족 단식 중단, 여당과의 대화 시도 등 추석명절 전에 진정될 조짐 있음
 - 공청회 전후하여 이슈화될 수 있도록 관심 환기
 - 언론에 비판적 기사가 제기되거나 시민단체, 지방변회의 비판적 의



견 표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시

- 원내 지도부와 접촉 설득 병행
 - 원내 지도부 의견이 소장파 의원들에게 영향력 있을 수 있음
- [여당] 간사가 **홍일표 의원이라는 점에서 지지 호소 및 동료 법조인 설득 요청 가능, 검찰 의원 다수이므로 법무부와의 사전 합의 및 설득, 비법조인(노철래, 이병석, 정갑윤) 의원의 친분관계 및 이해관계(지역구) 활용, 지도부(주호영 의원)를 통한 우회적 요청 등**
- [야당]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이 이슈화될 경우 상고법원안이 가장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장 및 대법원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임을 강조,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오히려 '국민의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길임을 설득, 개인적 친분관계 활용, 지도부(박영선, 박범계)를 통한 우회적 요청 등**

3. 법무부 사전 설득

▣ 법무부에 대한 사전 설득 필요

- 정부입법 형태로 추진하지 않는 데 대한 반감 가능성
 - 법률안 내용 여부를 떠나 입법 추진 방식에 반발 ⇨ 향후 유사 사례를 막고자 적극 방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여당 검찰 출신 의원들 입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현재 법무부 입장

- 현재 법무부에서 상고법원안을 비롯한 상고심 개선 논의 자체가 크게 이슈화되거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함
- 기초 담당부서는 제도개선기획단 ⇨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검찰국 관여 있을 것으로 보임
- 대검에서는 기초실이 의견 취합 및 정책방향 설정 담당할 것으로 보임



▣ 친분관계 활용, 협상안 제시 등을 통한 사전 설득

- 가장 확실한 반대 방지, 설득 방안은 '대응 검찰청 설치'라는 의견
↳ 검토 필요
- 입장을 결정, 표명하기 전에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등 의사결정권자에 대하여 사전 설명 및 설득 작업 진행 필요

4. 국회의원 서명 확보

▣ 설득 가능한 국회의원 풀 명단 작성 ⇨ 기획1심의관

- 역대 법사위 출신 의원
-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 법원행정처 실국장(전·현직)과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 다른 의원 설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호적이면서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 파악(ex. 나경원 의원 등)
- 대표발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적극적으로 동료 보좌관 설득하는 경우도 있음: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 대한 친분관계도 적극 활용

▣ 설명 전략 수립 : 맞춤형 설명자료 작성, 친분관계 활용

- 정당, 지역 이해관계, 정치적 입장, 지역구 등에 따른 개인적 입장에 맞는 전략 수립 및 설명자료 작성
 - 논리적 근거 뿐 아니라 정서적 호소와 설득, 현실적·사실적 효과, 친분관계 및 의원 이해관계 적극 활용
 - 동일한 비판에 대해 반박하거나 동일한 대안의 단점을 지적하는 경우에도 의원에 따라 다른 논거 제시 필요
 - [1] **[對 여당]** 상고법원, 대법원 재판은 경륜있는 상고법관, 대법관의 합의를 전제로 함 ⇨ 대법관증원, 대법원 이원적 구성안보다 상고심 법관의 '개인적 성향'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결론을 막고 안정 속에 점진적인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 **[對 야당]** 상고법원 설치를 통해 대법원의 실질적인 다양성 보장, 진보·



소수자 성향 대법관의 자유로운 소수의견 개진 가능성 및 판례 변경 가능성 보장 ⇨ 대법원의 정책기능 강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두텁게 보장

■ ② 상고법원의 충실하고 빠른 심리를 통해 일반 상고사건에서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 ⇨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면서 더 충실하고 빠른 심리 가능

■ ③ 상고법원 운영 방법에 따라서 평생법관제 정착 가능 ⇨ 전관예우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 기고문, 법조 논문, 신문 기획기사, 공청회 결과 중 중요하고 유리한 부분 정리, 발췌 작업 진행

■ **개별적 설득 작업 진행**

● 사전 설명 및 설득 작업 계속 진행

● 공청회 이후 법안 최종 형태 마련되면 본격적 서명 작업 시행



상고법원 관련 법사위 논의 프레임 변경 추진 검토

2015. 2. .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최근 외부의 상고법원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상고법원 안 입법 추진 동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현재 법사위 내부에서도 상고법원안은 법사위 제1소위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 중인 상태임
- 상고법원안의 법사위 통과 로드맵을 재점검하는 한편, 법사위원들의 찬반 입장, 기존의 법사위 논의 진척 경과 등에 비추어, 현재 상고법원안의 문제점 지적에 집중되고 있는 법사위 논의 프레임을 보다 긍정적·생산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추진할 필요 있음

2. 법사위 통과 로드맵

가. 2월 국회

- 3. 2.(월) 14:00 법사위 전체회의 ⇨ 4월 공청회 개최 의결 추진
- 3. 2.(월) 13:30 '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나. 4월 국회

- 법사위 전체회의 공청회 ⇨ 직후 제1소위 회부 추진
- 법사위 제1소위 본격적 논의
 - ① 사실심 충실화 외부 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 및 성과 홍보
 - ② '상고법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정책연구용역 결과 초안 발표 ⇨ 상



고법원의 경제적 효용 구체적 수치로 홍보

- **③입법 환경 및 논의 진행상황에 따라 수정안 제시** ⇨ [대법원 사건 분류 기준, 상고법원 법관 임명 등 절차, 필수적 변호사 대리, 지부 설치 등]

다. 6월 국회

▣ 법사위 제1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

☑ 6월 국회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임기만료 및 자동폐기 가능성 高

☞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으로, 법안심사는 12월이 돼서야 논의 가능하나, 20대 총선 준비 등으로 상고법원안은 큰 이목을 끌지 못할 것으로 예상

3. 상고법원에 대한 법사위원들 입장

▣ 법사위원들 찬반 입장 (한겨레 1. 7.자 기사 참조)

	찬성(4명)	유보(8명)	반대(3명)
여당	*홍일표 ¹⁾	*노철래, *이병석, 이한성, *정갑윤	김도읍, *박민식
야당	*박지원, *서영교, *임내현	이상민, 전해철, 우윤근, *이춘석	서기호

▣ 2. 5.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질의

- 서기호 위원 ⇨ 상고법관 임명절차 문제 제기, 4심제 논란, 상고사건 증가 원인 등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 임내현 위원 ⇨ 상고법관 임명과정에 대한 대안 제시 필요
- 박민식 위원 ⇨ 헌법재판소와의 관계가 문제,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가 상고제도는 미국과 같이 바꾸는 것이 옳은지
- 노철래 위원 ⇨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1) ‘*’는 공동발의자임



- 전해철 위원 ⇨ 하급심 강화 방안 철저 실시, 대법관 구성 다양화 필요

4. 법사위 논의 프레임 변경 추진

가. 현황 및 개선 필요 ⇨ ‘상고허가제’ 주장 필요

■ ① 상고법원안 VS 대법관 증원론 ⇨ 상고허가제 VS 대법관 증원론

- 상고법원안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고, 상고심 개선 대안으로 대법관 증원론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일부 감지됨
- 현재 구도로서는, 국민 일반에게 상대적으로 생경한 상고법원보다 직관적으로 이해되기 쉬운 대법관 증원론에 보다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상고법원안은 양 극단인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론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법현실에 맞춘 한국형 상고허가제라는 점을 이해시키고, 관철해내기 위해서는, 논의 프레임을 상고허가제 VS 대법관 증원론으로 변경할 필요 강함

■ ② 대법원 VS 법사위원들 ⇨ 법사위원 VS 법사위원

-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할 뿐, 법사위원들 사이에는 생산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인 입법 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법사위원들 중 일부로 하여금 상고허가제의 도입을 주장하게 함으로써, 법사위원간의 논쟁을 촉발시켜 활발한 논의를 유도하는 한편, 대법원은 기존의 수세적 당사자 입장에서 벗어나 객관적 제3자로서의 조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임

나. 법사위 내 ‘상고허가제’ 주장 전파 전략

1) 이병석, 이춘석 위원 설득

■ [새누리당] 이병석 위원



- 포항에 지역구를 둔 국회 부의장 출신 4선 의원 중진으로서, 당내 영향력 뿐만 아니라 법사위 내 부산경남 지역구 위원(김도읍, 박민식 위원) 등에 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대법원이 포항 법원 내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이병석 위원에게 제공하여, 이병석 위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병석 위원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원의 요청을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됨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위원 < 이춘석 위원

- 우윤근 위원은 친 법원 성향이긴 하지만, 원내대표의 직위로 인하여 상고법원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동료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지 않고 있고, 그러한 태도는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차라리, 같은 울산 출신으로서 법원과도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춘석 위원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적정함

☑ 상고허가제 설득 논리

- ☞ 주요 외국 선진국들이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
- ☞ 최고 법원의 본래적 기능에 충실
- ☞ 정당한 권리자들에 대한 조속한 권리 확정 보장 등

2) 3. 2.(월) ‘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활용

■ 정책세미나 개요

- 추진목적
 - 상고법원안에 대한 찬반 논의를 벗어나,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하여 원점에서 다시 차분히 논의하는 자리
- 주제 ⇨ 상고심 제도 개선
 - 주제 1 : 각국 상고제도의 변천과 그 시사점 (이○○ 교수)
 - 주제 2 : 상고제도 개선 방안 (이○○ 변호사)



■ 정책세미나 자료집 중요성

- 그간 국회 내에서는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집이 하나의 전범(典範)으로 자리잡아, 반대세력들은 그 자료집에서의 반대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활용하고 있음
- 정책세미나 자료집도 마찬가지로 법사위 논의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므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책세미나에서 ‘상고허가제’ 도입 필요성 강조 필요

- 정책세미나의 추진 목적과 주제에 비추어, 상고허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적절한 자리인 것으로 보임
- 상고허가제로 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상고법원안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자리가 아닌, 한국형 상고허가제로서의 상고법원의 도입이 대안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끝>



상고법원

2014. 10. .

기획조정실

1. 검토배경

▣ 장윤석 의원 법원조직법 발의 ⇨ 2015년 2월 국회 상정 예상

- 발의일시 : 2014. 11. 11.
- 법사위 회부일 2014. 11. 12.
- 발의 의원 : 장윤석 의원 외 145인
- 주요 내용 :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비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임용
- 담당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
 - 정○○ 전문위원, 강○○ 입법조사관(서울대 법대 01학번, 입법고시 24회)
- 상고법원안과의 바터개념으로 활용될 가능성 다분

2. 공동발의 146인 성향 분석

▣ 여당

- 중진
- 영향력

▣ 야당

- 중진
- 영향력

3. 대응 방안



가. 상고법원안 1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상정

나. 법안 철회 추진 ⇨ 사실상 불가능

- 의원은 발의한 법안을 철회할 수 있음(국회법 제90조 제1항 본문)
- 다만,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은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 가능(같은 항 단서)

다. 전체회의 상정 저지

▣ 친 법원 성향 법사위원장 설득

- 법안 자동상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다만, 자동상정 규정이 도입된 이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법안은 없음
- 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진보성향 대법관 다수 점하게 될 우려 ⇨ BH나 새누리당에서는 반대 ⇨ 문제는 야당
- 전해철 의원 상고법원안 입장 ⇨ 대법원 구성 다양화 필요 ⇨ 전해철 의원이 위 법안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음 ⇨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인 우윤근 설득하여 당차원에서 의사결정되도록 유도할 필요 있음

라. 법안심사 제1소위 상정 저지

- 법사위 고유법안은 1소위에 반드시 회부되므로, 1소위에 회부된 후 의사 일정 상정 저지하여 자동폐기 되도록 노력.

▣ 제1소위 상정 법안 결정권자 누구?

▣ 결정자에 대한 청탁 및 영향력 행사

▣ 2015. 5. 여당 간사의 이한성 의원으로의 변경 이후의 대처방안



마. 제3의 방안?



9월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2015. 9.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 입법추진의 **마지막 골든타임 도래**

- 19대 국회 임기 내 법률안 처리할 수 있는 **최후 시점 압박** ⇨ 총력 전을 통한 유리한 입법추진환경 구축 필요

☑ 하반기 정기국회 일정

- ▶ 정기국회 회기: 9. 1. ~ 12. 9.
- ▶ 국정감사: 9. 10. ~ 10. 8. (대법원 국감: 10. 7.)
- ▶ 예산안 심사: ①상임위 예비심사 10. 12., 10. 19. ~ 10. 26., ②예결특위 종합심사 10. 28.부터 개시
- ▶ 법률안 심사: 10. 28.부터 개시

- 정기국회 만료일인 12. 9.까지 입법 성사 목표로 추진

- 아울러, BH 설득을 위한 중대 분수령으로 법무부와의 건곤일척의 협상 목전에 둔 상황

▣ 입법추진환경에 대한 **냉철한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필요

- 국회, BH, 법무부, 언론 등 사법부 주변 환경에 대한 냉정한 진단
- 이를 토대로 유리한 입법환경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전방위 입법추진 전략 수립

2. 입법추진환경 현황

가. 국회

▣ 법사위 내 찬반 입장 팽팽한 분위기



- ①찬성(7명): 이상민, 홍일표, 이병석, 정갑윤, 김재경, 박지원, 임내현, ②반대(5명): 이한성, 김도읍, 김진태, 전해철, 서기호, ③유보(4명): 노철래, 우윤근, 이춘석, 서영교 ⇨ 실질적으로는 찬성에 가까운 유보
- 다만, 최근 한명숙 사건 판결에 대한 야당의 불만 고조되면서 상고법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커져 가는 추세

☑ 전해철 법사위 여당 간사 비공식 반응(의원실 보좌진 전언)

“이번 한명숙 사건 선고로 상고법원은 물 건너 갔다. 상고법원 법안에 결코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법안 심사 최대 관문인 법사위 1소위 극복이 난공불락

- 반대 의원 대거 포진(총 8명 중 5명) ⇨ 이한성, 김도읍, 김진태, 전해철, 서기호 의원
 - 여당 간사 겸하는 1소위 위원장 및 야당 간사 모두 반대 입장
- 1소위 위원장 이한성 의원의 (중략)도 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법사위원장의 강력한 법안 처리 의사는 매우 고무적

- 17대 국회에서 고법 상고부 설치 좌초 및 이후 제도개선 지체 상황 등에 대한 주관적 아쉬움 등 교착되어 있는 상태
- 19대 법사위 하반기 법사위원장 취임 이후 저조한 법안 처리 실적에 대한 부담 큰 상황 ⇨ 본인이 적극 추진하는 특허법원 관할 집중 법안 비롯한 주요 법률안에 대한 연내 처리 강력 희망
- 다만, 법사위원장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신뢰와 지지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의해서 바라볼 포인트

☑ 이상민 법사위원장에 대한 법사위원 등 국회 내부 평가

(생략)



나. BH·법무부

▣ [BH] VIP 관심 유인에는 성공하였으나, 여전히 **핵심 보좌진의 반대 입장에 변함 없음**

- VIP 8. 6. CJ와의 면담에서 법무부와의 협상 지시하였으나, 사안 자체가 VIP나 BH의 주요 정책 사항으로 주목받기에는 한계
- 결국 사법부 관련 업무 담당하는 핵심 보좌진의 입장 및 역할 중요
⇒ But, 지근거리 보필하는 친검찰 출신 민정수석 등의 반대 목소리 여전히 강한 상태
 - 좌고우면하지 않는 직선적 스타일의 민정수석 ⇒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VIP 임명권 침해 문제를 선결 과제로 요구

▣ [법무부] 외부적으로 **반대 입장 표면화** + 내부적으로 **VIP 지시 이행해야 하는 부담**

- 초기 입장표명 단계에서는 신중검토 의견 제시하다가, 본격적으로 국회 법률안 심사 개시되자 확고한 반대 입장 개진
 - 법원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심리가 크게 발동
 - 최근에는 의원 입법 방식으로 발의한 형식적인 부분에 대하여까지 사소한 트집을 잡고 있음
 - 대법관 증원론에 대하여는 진보 세력의 최고법원 진출을 우려하는 문제인식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공식적으로 소수 증원론 주장도 개진
- VIP 협상 지시에 따른 상황 변화
 - 민정수석이 8. 10.경 법무부장관에게 VIP 지시사항 전달 ⇒ VIP 관심사항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반응해야 하는 부담 발생



- [대외적·형식적 입장] ⇨ VIP 지시 이행 위해 노력
- [대내적·실질적 입장] ⇨ 지연 및 회방 전략 구사 가능성 높음
 - 약 1달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진정성 있는 협상 태도 보이지 않고 있음

다. 언론

▣ 대국민 인식 제고에는 성공

- 꾸준한 홍보 활동으로 '상고법원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 확산 성과 거둠
 -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메이저 언론에 게재된 기획기사 등이 상당한 파급력 발휘함
- 일부 반대 성향의 언론 보도로 인한 노이즈 마케팅 효과도 함께 발생

▣ 그러나 7월부터 장기적 홍보 전략 추진한 이후 전반적으로 홍보 침체기

- 조선, 중앙, 동아 등 메이저 보수언론의 상고법원에 대한 기사 게재 사실상 중단
- 그 사이 본질에서 벗어난 상고법원 추진 배경, 경과 등에 대한 여론 호도형 기사 등장
 - 국민일보 7. 9.자 상고법원 특집 기사 ⇨ 상고법원 대국민 설문결과와 함께 대법원의 상고법원 입법안 통과를 위한 각종 활동 비판

☑ [상고법원 논의 1년, 문제 없나] 국민 10명 중 9명 "상고법원이 뭔지 잘 몰라"
「정작 사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은 상고법원 신설 논의에서 소외돼 있는 셈이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신설에 '올인'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상고법원 강행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8. 5.자 SBS 취재파일(권○○ 기자) ⇨ 대법원의 이중성, 위헌적 발상, 입법 로비 등 자극적 용어 사용하며 날선 비난 토로

☑ [취재파일] 욕망의 대법원, 낮 뜨거운 상고법원



「대법원장이 사법부 번영과 번성을 위한 유일무이한 길을 '상고법원'으로 삼자,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기마명처럼 종횡무진 밤낮으로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대법관 증원은 반대하는 대법원의 이중성... 상고법원 도입은 위헌적 발상...행정처 출신 고위법관은 너나 할 것 없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광폭 행보를 벌이고 언론사를 찾아가 여론 조성만 시키면 통과는 문제없다고 자신한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선 개헌과 국민투표를 추진해야지, 입법 로비로 가능한 게 아니다」

3. 입법추진 전략

가. 기본 방향 ⇨ 총력전을 통한 침체기 국면 전환 모색

- ▣ ① 사법부 주변의 강한 반대 목소리 잠재울 수 있는 획기적 방안 수립
 - 상고법원에 대한 각종 부정적 이미지 탈색 방안 ⇨ 설득력 있는 대안 및 이를 표상하는 네이밍 도출
- ▣ ② BH 반대기류를 선회시킬 수 있는 전기 확보 ⇨ 법무부와의 협상 타결을 통한 창조적 대안 마련
- ▣ ③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통한 상고법원 대세론 정착
- ▣ ④ 하반기 국회 일정에 조응한 단계별 입법추진 전략 수립

나. 상고법원 대안 제시 및 용어 변경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리메이킹 (Remaking)

1) 외부 설득력 높은 대안 선택 제시

- ▣ 대법원 내 별도 재판부 설치
 - 대법원 내에 상고법원 역할 담당하는 대법관 아닌 대법원판사로 구성된 재판부 두는 방안
 - (+) 사법부가 새로운 법원 신설로 세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오해 불식



- (+) 법무부·검찰 입장에서는, 대검 기능 일부가 상고검찰청으로 격하되는데 대한 반감 해소 + 법무부 제2차관직 신설하여 조직과 기능 확대 가능
- (-) 다만,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등에서 대법원 소속 판사 대폭 증가로 인해 대법원의 최고법원 위상이 격하될 우려
 - (가능한 극복 방안) 대법관부와 대법원판사부의 준별 ⇨ 재판부 구성원 수, 담당 사건 유형, 재판부 운영 방식 등 달리하여, 정책법원 기능 수행하는 대법관부의 위상 유지 또는 오히려 격상

■ 대법원 심판 사건 확대

- [형사사건] ① 1심 형사합의 사건 전체, ② 그 외 형사사건 중 검찰 총장이 대법원 심판 사건 의견 개진한 사건
- [행정사건]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행정사건, ② 그 외 행정사건 중 법무부장관이 대법원 심판 사건 의견 개진한 사건

2) 대법원 내 별도 재판부 설치를 표상하는 새로운 네이밍

■ 네이밍 필요성

- 새로운 상고심 '법원' 신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위헌론 시비 등 팽배 ⇨ 피로감, 부정적 인식 확산에 따른 용어 汚染 심각
- 긍정적 인식과 신선한 인상을 각인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명칭 발굴 필요
- 대법원 이원적 구성안은 대법관과 대법원판사로 구성된 '혼합부'를 연상시킬 가능성 높음

■ 가능한 네이밍

- (1안) 대법원판사부안
- (2안) 대법원 통합적 구성안



- (3안) 대법원 양원제
- (4안) 대법원 상고부안
- (검토) 대법원 내에 대법관 아닌 판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재판부 구성되는 것을 강조하는 1안,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고법 상고부안에 대칭하여 대법원 내 다른 형태의 상고재판부 신설하는 것을 표상하는 4안(대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는 '대상고부' 등으로 명칭) 등 유력 검토

■ 변경된 명칭 공표 타이밍 포착

- 법무부와의 협상 진척 경과, 국회 법률안 심사 경과, 언론 분위기 등 다각도 검토
- 최후의 카드인 만큼, 충분한 여건 조성된 후에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
 - 선부른 공표로 국회, 법무부 등 몰이해, 또 다른 시각의 비판 상황 이어질 경우, 최종 대안으로서의 활용가치 무색
 - 법무부와의 협상 어느 정도 성숙되고, 국회에 대한 사전 설명 완료된 시점 적절

다. 법무부와의 협상 타결 ⇨ **강은 양동 전략** 구사를 통한 **협상 지연 타파**

■ 법무부 지연 전략 극복

-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국면 이용하여 지연 전략 구사 가능성 높음 ⇨ 양 기관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지루한 지구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필히 극복하여야 함

■ [압박] VIP 지시사항임을 전면에 내세워 강도 높게 협상 압박

- VIP 지시에 따른 법무부의 책임감과 부담감 심분 활용
- CJ와 VIP 면담 이후 변화된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 명확히 인식시켜야 함 ⇨ ① VIP 구체적 지시 내용 재차 전달하며 협상에 응할



것 주문, ② 기존의 무조건적 반대 입장 고수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중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점을 명확히 경고

■ [회유] 상호 타협을 통한 윈-윈 구도 형성

- VIP의 창조적 대안 마련 지시가 법무부 입장에서도 기존 태도에서 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와 명분이 될 수 있는 상황
- 현재의 상고법원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 준비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절충과 양보 가능하다고 설득
- 법무부의 주요 현안 및 요구사항과의 Big Deal을 통한 상생의 길 제시

■ [구체적 협상 방안] 효과적인 협상 프레임 구축 + 이원적 협상 라인에 따른 단계별 협상

- 격식화된 협상 진행
 - [장소] 대법원과 법무부 청사 등 사무적 장소에서 홈앤어웨이 방식의 상호 교차 협상 추진
 - [방식] 공식적인 회의 형식으로 진행, 오만찬과 겸하는 형태 지양
- 협상의 데드라인 설정
 - 최종 시한 및 대략적인 협상 횟수를 사전에 결정하고, 데드라인까지 협상 마무리하기 위해 전력 투구
 - 데드라인에 대한 인식으로 막판 양보의 타이밍 확보
- 향후 협상 일정 ⇨ 9. 11.(금) 법무부 청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 기조실장, 정책실장 -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간 실무협상 예정
 - [협상 방향] ① 준비된 대안 제시, ② 법무부의 진정한 인식 및 needs 파악
 - [점점 모색 시] 2단계 수뇌부간 본격 논의 단계로 진전 ⇨ 빅딜 시도
 - [점점 모색 불발] 추후 실무진간 2차 협상 일정 확보 ⇨ 협상 장소(대법원



청사), 협상 세부의제 확정

라. 주요 언론 활용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개선

▣ 집중 홍보를 통한 상고제도 개선 공감대 확산

- 언론을 통해 상고제도 개선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그에 따른 장점 및 기대효과 부각
- 올해 내 반드시 완성되어야 할 제도 개혁 아이템으로 꾸준히 소개
- 부차적으로 입법 지연에 따른 국회나 반대 세력의 책임론 자연스럽게 대두시킴

▣ 구체적 홍보 방안

- [언론매체 선별] 대국민 긍정적 공감대 형성에 큰 영향 미치고, 파급력 높은 메이저 언론사 활용 ⇨ 조선일보 1면 기사 등
- 언론기사의 전체적 방향
 - 상고법원 제도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상고법원 개요 소개하는 수준에서 탈피
 - 국민 입장에서 와 닿는, 상고사건 처리 지체로 인한 문제점 등 두드러지는 구체적 사례 발굴, 제시
 - 상고제도 개선 시, 긍정적 기대효과 객관적 수치화하여 제시
 - 상고심 소송물 가액 합계 5조 원 ⇨ 사건 처리 1년 늦어질 경우, 자본시장 평균 이익률 2%에 해당하는 1천억 원 경제손실 발생
 - 상고심 당사자 12만 명(논산시 전체 인구 수)의 물질적·정신적 고통 ⇨ 신속한 일상 복귀 필요 어필

마. 국회 입법추진 전략 ⇨ 단계별·상황별 맞춤형 전략 구사

1) [1단계] 국정감사 이전 ⇨ 주요 포스트 법사위원들 접촉·설득

▣ 이상민 법사위원장



- [목표] 기존 지지 입장 확고히 흔들리지 않도록 설득
- [방법] ①적극 접촉으로 인적 유대관계 강화 통한 정서적 접근, ②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게 내세울 수 있는 공약의 기초 소스 제공(ex. 대전 제2전산정보센터 설치, 특허법원 관할 집중 법률안 통과 등)

■ 전해철 야당 간사

- [고려 상황] 한명숙 사건 후폭풍으로 성급한 직접 접촉 시도는 역효과 우려 ⇨ 약간의 냉각기 필요
- [설득 방법] 전 의원에 대한 결정적 영향력 발휘할 수 있다고 자임하는 전병헌 의원 통한 우회 설득 추진

■ 주요 여당 법사위원들

- VIP 측근 의원으로 당내 영향력 있는 이정현, 윤상현 의원에게 당내 법사위원 및 BH에 대한 지원사격 요청
- 김진태 등 친검찰 성향의 강력 반대 의원들은 직접 설득보다 법무부와 협상 추이 관망 후 접촉·설득 방향 모색

2) [2단계] 국정감사 이후 ⇨ **신속한 입법추진전략** 구사

■ 법무부와 원만한 협상 타결 시

- 야당에게는 법무부와의 협상 내용 비공개
- 법사위 1소위 대체하는 대안 조기 추진
 - 법사위 1소위 논의 개시되더라도, 現 1소위 구도 속에서 상고법원 법률안 가결 기대는 요원
 - 이한성 1소위 위원장 (중략)

- [타개책] 국회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법안심사 특위 구성



- 여야 각 2인, 영향력 있는 중진급 의원 중 상고법원안에 대한 이해도 높은 의원들로 1소위를 대체하는 특위 구성
- 특위에서의 밀도 있는 집중 심사를 통해 법률안 통과 추진

▣ **법무부와 협상 실패 시 ⇨ 최후의 정면돌파 시도**

- 긴급 상황을 극복하는 非常의 타개 방안 모색
- **[타개책] 상고법원안을 전체회의에 부의하여 처리** ⇨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전체회의 부의

☑ 의사일정 변경 전례

- ▶ 2005. 6. 29. 제17대 254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노회찬 의원 외 1인 찬성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상정 ⇨ 2소위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
- ▶ **[표결 결과]** 찬성 7인, 반대 2인으로 당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였으나, 결론 못 내리고 계속 심사



상고법원 법률안 11월 정기국회 통과 전략

2015. 11.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19대 국회 법률안 통과를 위한 **최후의 법률안 심사 일정 도래**

● 19대 국회 12. 9. 정기국회 종료로 사실상 활동 종료 예상

- ①내년 총선 대비 등 여러 복잡·다난한 정치 현안 존재, ② 예산안 심사도 12. 2.까지 마무리 될 것 ⇨ 예년과 같은 12월 임시국회 개의 기대하기 어려움

● 11. 2. 법사위 1소위 개의를 필두로 앞으로 약 1달 동안 진행될 법률안 심사의 장에서 입법추진을 위한 마지막 총력 투입해야 할 상황

▣ **현 국회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최후의 타개책 검토**

● 당초 예상과 달리, 법사위 1소위 통과가 매우 여의치 않은 상황 ⇨ 1소위 의원 접촉·설득 등 기존 노력과 병행하여, 현 국면을 전환·극복할 수 있는 최후의 입법추진 방안 모색

2.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국회 현황

가. 법사위원들 성향

▣ 법사위 내 찬반 입장 팽팽한 분위기

● ①찬성(7명): 이상민, 홍일표, 이병석, 정갑윤, 김재경, 박지원, 임내현, ②반대(5명): 이한성, 김도읍, 김진태, 전해철, 서기호, ③유보(4명): 노철래, 우윤근, 이춘석, 서영교 ⇨ 실질적으로는 찬성에 가까운



유보

- 다만, 지난 8. 20. 한명숙 사건 판결 이후 야당의 불만 및 정치적 공세 고조되면서 상고법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커져 있는 상태

☑ 전해철 법사위 여당 간사 비공식 반응(의원실 보좌진 전언)

“한명숙 사건 선고로 상고법원은 물 건너 갔다. 상고법원 법안에 결코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다”

- 여당은 법무부·검찰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검찰 출신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

▣ 특히, 법안 심사 최대 관문인 법사위 1소위 극복이 난공불락

- 반대 의원 대거 포진(총 8명 중 5명) ⇨ 이한성, 김도읍, 김진태, 전해철, 서기호 의원

- 여당 간사 겸하는 1소위 위원장 및 야당 간사 모두 반대 입장

- 1소위 위원장 이한성 의원의 (중략) 도 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다만, 법사위원장 등 여야 중진 의원들은 상고법원안 통과 등 상고심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 법사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19대 국회 내 상고심 제도 개선 달성해야한다는 강력한 추진 의사 표방

- 개인적으로, 17대 국회에서 고법 상고부 설치 좌초 및 이후 제도개선 지체 상황 등에 대한 주관적 아쉬움 등 교착되어 있는 상태

- 19대 법사위 하반기 법사위원장 취임 이후 저조한 법안 처리 실적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

- 다만, 법사위원장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신뢰와 지지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의해서 바라볼 포인트

☑ 이상민 법사위원장에 대한 법사위원 등 국회 내부 평가



(중략)

- 이병석, 박지원 등 여야 일부 다선 의원들도 상고법원안에 대하여 찬성 입장에 서 있음

☑ 이병석 의원 대법원 국정감사 발언 중

“본 위원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법안 공동발의자로 제 소신에 따라 국민의 신뢰 받는 법원,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지향하는 대법원의 뜻에 동의함”

☑ 박지원 의원 대법원 국정감사 발언 중

“본 의원은 상고법원 제도가 처음 제안되었을 때부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과 함께 상고심의 업무 폭주를 막고, 또 지방법원 항소부 판결도 고등법원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하급심을 강화하는 조치가 선행이 된다는 조건하에 찬성을 했음”

나. 상고법원 법률안 심사 진행 상황

- ▣ [형식적·시기적] 법사위 1소위 회부 이후 법률안 심사 거의 **진전 없는 상태**

- 상고법원 법률안 발의 및 심사 경과

- ▶ 2014/12/19 법률안 발의
- ▶ 2015/4/20 법사위 전체회의 공청회 실시
- ▶ 2015/4/29 1소위 회부
- ▶ 2015/6/17 1소위 심사 ⇨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법무부·법원행정처 의견 청취 후 종료
- ▶ 2015/7/17 1소위 안건 상정되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논의 개시 불발
- ▶ 2015/7/21 1소위에서 첫 실질적 심사 ⇨ But, 법률안 내용과 다소 동떨어진 하급심 충실화 조건, 법률안 발의 형식 지적 등 피상적 논의만 이루어짐

- 1소위 회부 후 약 4달 반이 경과하였음에도 **논의 경과 매우 지지부진**

- ▣ [실질적·내용적]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



- 안전으로 논의 착수한 2차례 1소위에서, 의례적인 법률안 심사 개시에 머물거나, 법률안 발의 배경·형식, 하급심 충실화 필요성 지적 등 법률안의 핵심에서 벗어난 공허한 발언 주고받기에 그침
- 상고법원안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할 중요 법률안임에도, 안전 상정 여부나 안전 순위에서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음

– 국정감사 이후 다시 개의한 10. 20. 1소위 안전에서 배제됨

☑ 10. 20. 1소위 안전 미상정 경위

- 야당 간사 전해철 의원실 초안에 안전으로 미상정
- 1소위 위원장 겸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실 초안에는 상정(법원 담당 보좌관이 포함시킴)되어 있었으나, 이한성 의원이 해당 보좌관을 나무라며 확정안에서 상고법원안 삭제할 것 지시

– 11. 2. 개의하는 1소위 안전에도 포함되지 않음

☑ 11. 2. 1소위 안전 미상정 경위

- 홍일표 의원 등을 통해 이한성 의원에게 상고법원안 상정 강력 주문
- 이한성 의원이 전해철 의원에게 상정 요청하였으나 전 의원이 이를 거부 ⇨ 야당 간사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의사일정 상정 불발
- 설령 의사일정에 포함되었더라도, 후순위이었을 것이라는게 국회측 전언

3. 11월 입법 추진을 위한 타개책

가. 타개책 모색 필요성

- ▣ **현 상황에서는, 11월 추가 개의 예상되는 1소위에서도 안전 상정 및 충실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음** ⇨ **특위 구성 VS 전체회의 부의 등 대안 필요**
- [문제 상황 ①] 야당 간사 전해철 의원의 강력한 반대 ⇨ 법원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노골적인 이유 들면서 안전 상정 자체를 저지하고 있음



- [문제 상황 ②] 이한성 1소위 위원장의 안전 상정 주도권 행사 등 역량 부족 ⇨ 1소위 위원장 지위에서 안전 상정 주도할 수 있으나, 우유부단한 태도 보이며 야당 간사 동의 없는 안전 상정은 불가하다는 입장 고수 중, 안전 상정되더라도 (중략) 으로 반대 의원들의 기세를 누를 수 있는 능력 발휘 못할 것

- [문제 상황 ③] 법사위 1소위 안전 상정되어 논의 개시되더라도, 現 1소위 구도 속에서 상고법원 법률안 가결 기대는 요원

- 법무부·검찰의 종속 변수인 김진태, 김도읍, 이한성 의원은 견제·반대 프레임에 갇혀 있음
- 야당의 전해철, 서기호 의원도 반대 수위와 강도를 유지하고 있음

▣ **내년 총선 준비 등 정치 현안에 밀려 1소위 논의 기회 자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 높음**

- 법사위원장 등 일부 의원들이 법률안 처리에 강한 열의 보이더라도, 11월 1달 동안 추가 개의 예상되는 1소위 횟수는 2~3회가 전부일 것

- 그마저도 내용상·시간상으로 충실한 회의가 되리라 장담할 수 없

- 의원들이 법률안 처리 실적에만 관심 가지고 회의 진행할 가능성 높음
- 이미 10월 이후 개의하고 있는 1소위에는 대부분 큰 쟁점 없이 쉽게 통과될 수 있는 법률안 위주로 안전 상정하는 경향 나타나고 있음

나. 구체적 방안 ⇨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非常의 타개 방안 모색

1) 국회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법안심사 특위 구성** 방안

- ▣ 1소위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특위 구성 ⇨ 특위에서의 밀도 있는 집중 심사 통해 법률안 통과

☑ **법안심사특위 구성 사례**



▶ 17대 국회에서, 사개추위가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내에 법안심사 4인 특위 구성

▶ [구성 배경]

- 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재정신청 전면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 공판중심주의 심리절차 확립 등), 2006. 1. 6. 발의
- 이후 법안심사1소위를 수차례 열었으나, 의원들의 이해 부족, 입장 차이 등으로 2006년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논의 지지부진
- 2007. 2.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문병호 의원, 한나라당 주성영, 이주영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4인 특위 구성

▶ [4인 특위 운영 성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집중 심사 ⇨ 원안에 이의 없는 내용, 수정 합의 내용, 4인 특위에서도 합의되지 않아 1소위로 회부할 내용 구분
- 4인 특위에서 1차 정리된 내용을 1소위에서 확인하고 추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 2007. 4.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하여, 2008. 1. 1.부터 시행

■ 특위 구성의 법률적 근거

☑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②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 특위 구성 시기

-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서는 11월 초순 이내 신속한 구성 필요

■ 특위 구성 방법

● 법사위원장에게 특위 구성 설득

- 4월 임시국회부터 법률안 처리 실적 매우 저조한 상황 설명 ⇨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책임감과 부담감 자극
- 특히 이한성 1소위 위원장이 법률안 심사 주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임을 강조 ⇨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법률안 처리를 위



해서는 특위 구성 불가피한 사정 부각

- 17대 국회 당시의 4인 특위 성공 사례 제시 ⇨ 법사위원장 본인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어, 특위 구성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할 것

● 신속·효율 진행에 적합한 2인 특위 또는 17대 국회 때와 유사한 형태의 4인 특위로 구성

- [특위 의원 조건] ① 영향력 있는 중진급 의원 중, ②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 높고 법원에 우호적인 의원으로 구성

- 17대 국회 4인 특위 때도, 여야 간사(주성영, 이상민 의원) 및 1소위 위원장 (문병호 의원)이 특위에 참여함

- 특위 의원 후보군

- [여당 ①] 홍일표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자로서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 제일 높고 법원 입장 대변해 줄 수 있는 의원, 다만 이러한 점이 특위 참여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키울 수도 있음

- [여당 ②] 이병석 의원: 4선 의원이자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타 의원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 보유, 법원과 우호적 관계 유지하고 있고 상고법원안에 대하여도 찬성 입장

- [야당 ①] 우윤근 의원: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3선 의원, 품격있는 발언태도와 유연한 협상능력으로 여야 의원들의 신망 두텁고, 상고법원안에 대하여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음

- [야당 ②] 이춘석 의원: 야당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및 운영위 간사 역임 등 활발한 원내 활동으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시 못 할 영향력 보유, 율사 출신다운 합리적·논리적 사고 및 판단능력으로 상고법원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보이고 있음

- 특위 구성 방안

- [제1안] 여야 각 1인씩 구성 ⇨ 여당 **이병석** 의원, 야당 **우윤근** 의원



- [제2안] 여야 각 2인씩 구성 ⇨ 여당 **홍일표, 이병석** 의원, 야당 **우윤근, 이춘석** 의원
- 여야 간사는 특위 구성 취지 및 배경 등 고려하여 둘 다 배제

▣ 특위를 활용한 상고법원 법률안 통과 성사

- 상고법원 법률안을 올해 내 중점 처리 법률안으로 규정짓고 특위에 상정
- 1주일에 1~2회 가량 집중 심사를 거쳐, 원안 통과 의견 또는 대안 등 수정 가결 의견 도출
- 특위를 1소위 대체형으로 운영할 경우 ⇨ 특위 논의 후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 특위를 1소위 대체형이 아닌 보완형 소위원회로 운영할 경우 ⇨ 1소위에서는 특위 심사결과를 형식적으로 추인하거나, 가결을 전제로 세부 사항을 보완하는 형태로 심사 진행
- 특위 또는 1소위 가결 후, 정기국회 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 추진

2) 전체회의 부의 방안

▣ 개요

- 1소위 계류 중인 상고법원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부의하여 심사 후 의결하는 방안

▣ 가능한 방안

- [제1안] 1소위 의결로 전체회의 회부 ⇨ But, 1소위 위원장 등 의원들 반대 시 불가능
- [제2안] 심사기관 도과 후 전체회의 부의 (국회법 제71조, 제85조)
 -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 시, 1소위 회부 안전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 가능



(국회법 제85조 제1항 3호) ⇨ 1소위에서 그 기간 내에 심사 마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은 중간보고 듣고 전체회의 부의 가능(국회법 제85조 제2항)

- But, 여야 간사 반대 시 불가능

● [제3안]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전체회의 부의 (국회법 제71조, 제77조)

-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고 (국회법 제71조 제2문), 위원장은 의사일정 변경 시에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음(국회법 제77조)

☑ 의사일정 변경 전례

▶ 2005. 6. 29. 제17대 254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노회찬 의원 외 1인 찬성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상정 ⇨ 2소위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

▶ [표결 결과] 찬성 7인, 반대 2인으로 당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였으나, 결론 못 내리고 계속 심사

● [검토] ⇨ 제3안이 현실적 타개책으로 적합

- 1소위 의결 요하거나 심사기간 지정하는 제1, 2안은 여야 간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추진 불가능

- 현재 법사위원들 중 과반수가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해 찬성 내지 조건부 찬성 입장 ⇨ 의사일정 변경동의 안건 상정하여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는 것이 1소위 논의 지연되고 있는 특단의 상황에서 올해 안에 중요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임

3) 특위 구성 방안과 전체회의 부의 방안 선택적 추진 가능

▣ 특위 구성 방안의 장점 및 고려사항

● [장점] 특위가 1소위 역할을 대신하여 법률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법사위 내 충분한 담론을 이어갈 수 있음

● [고려 사항] 원활한 특위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여야 간사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고, 무게감 있는 특위 참여 위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성숙되어야 함



■ 전체회의 부의 방안의 장점 및 고려사항

- [장점] 회의 주재권 있는 위원장의 확고한 의사, 2명의 안전 발의 의원만 충족되면, 여야 간사 등과의 사전 교감 없이도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추진할 수 있음
- [고려사항] 다만, 법사위 내부 의견 수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인다면, 전체회의 안전 상징 표결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강경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고, 법률안 심사에도 악영향 미칠 수 있음
⇒ 우호적 법사위원들에 대한 사전 접촉을 통해 전체회의 부의 방안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획득해야 함

■ 결론

- 향후 법률안 심사 일정, 논의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법사위 내부 분위기와 입법 추진 상황에 보다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므로, 현 상황에서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추진해 볼 수 있는 타개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시도하는 것이 긴급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방안

2015. 7.

기획조생실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 입법 성사를 위하여 **법무부의 협조 견인 필요**

- 법사위 검찰 출신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영향력 무시할 수 없음
 - 특히 법사위 1소위 소속 김진태 의원 등은 법무부의 종속 변수
- 입법 최종 목표 시점인 하반기 국회(10월, 11월경) 법률안 심사 돌입 이전에 설득 완료 필요

☑ **상고법원 입법추진 로드맵**

- ▶ [7월 임시국회] 7. 16./7. 20. 법사위 1소위 안건 상정 및 충실한 논의
- ▶ [8월 임시국회] 회기: 8. 16.경~8. 31. 예상, 1소위에서의 논의 속개 ⇨ 쟁점에 대한 합의점 등 도출
- ▶ [9월 이후 정기국회] ①9월 추석연휴 전까지 국정감사 종료 예상, ②예산안 본격 심사 전인 10월, 11월경 법사위 1소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 추진

▣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는 **공식적 신중검토 · 사실상 반대 입장** 고수

- **對사법부** ⇨ 여러 상고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One of them)로 상고법원안 취급
- **對국회 · BH** ⇨ 의원들 상대로 입법방해 전략 구사, 반대 논리 제공

▣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에 즈음하여 새로운 대응 전략 강구해야 할 상황**

- 법무부 수장 교체에 따른, 법무부의 기본 입장 변화 가능성 등 분석
 - 신임 법무부장관의 상고법원에 대한 기본 인식, 성향, 對사법부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 등 파악 ⇨ 이를 토대로 신임 법무부장관에 대한 접촉 주체, 시기, 협상 카드 등 설득전략 수립



2. 법무부 현황 및 향후 전망

▣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 ⇨ 이중 플레이

- 표면적 ⇨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 But 상고법원안에 대하여는 신중검토 의견

☑ 4. 20. 법사위 상고법원 공청회 장○○ 검사 발제문 일부

▶ 「상고심 재판 지연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고법원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거나 이미 시행했던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6. 17. 법사위 1소위에서의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차관 의견

▶ 「상고제도 개선에 관하여 국민 여론 수렴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의견이 모아진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 앞으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실질적 ⇨ 확고한 반대 입장

- 법원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심리 발동 ⇨ 각종 궤변적 반대 논리 구성·유포
- 기본적으로 타 기관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수수방관적 태도 견지
- 다만, 대법관 증원론에 대하여는 진보 세력의 최고법원 진출을 우려하는 문제인식 가지고 있음

▣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에 따른 기본 입장 변화 여부 등

- 7. 9. 신임 김현웅 법무부장관 취임 ⇨ 現 정권 5번째 호남 출신 장관으로 법무부 수장 등극

☑ 신임 김현웅 법무부장관 프로필

- ▶ 전남 고흥 출신, 광주일고/서울법대/사법연수원 16기
- ▶ 법무부 법무심의관/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춘천·서울서부·광주지검장/부산고검장/법무부 차관
- ▶ 법조비리 관련 조○○ 부장판사 수사, 정○○ 전남도교육감 뇌물 수사 등 담당
- ▶ 특수수사, 법무행정에서 두루 능통하다는 평



- [인선 배경 등] ①현 정권 들어 주요 사정기관 인선에서의 ‘영남 편중’ 완화하기 위한 탕평 인사, ②선친 시절부터 이어온 VIP 집안과의 인연(부친인 김○ 전 의원이 1979년 전남 고흥·보성에서 무소속 당선 후 당시 여당인 공화당 입당)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우호적 평가, ③황교안 국무총리의 적극 추천

- 취임 일성으로, ① ‘믿음의 법치’, ②부정부패 척결 의지 천명

☑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사 일부

▶「공공분야의 적폐와 민관유착 비리,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후속 검찰 인사 등 내부 조직 정비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예측
 - 연수원 선배인 검찰총장과의 검찰 인사 등에 있어서의 호흡 주목됨
- 당분간 상고법원에 대한 기존의 원론적 신중검토·사실상 견제 입장에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
- (이유①) 취임 초기 전임 법무부장관의 후광에서 벗어나, 조기에 검찰 조직 장악하고, 본인 작품으로 내세울 수 있는 수사 실적 거두려는 의욕 보일 수 있음 ⇨ 상고법원안에 대하여 큰 관심 가질 여력 부족
- (이유②) 現 정권 사정라인의 역학 구도상,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주도권 행사 및 컨트롤 타워 역할 기대하기 어려움
 - VIP의 전폭적 신뢰받고 있는 민정수석의 입김 여전히 강함
 - 상관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의 영향력 및 의중을 벗어난 행보에도 한계 있을 수밖에 없음
- (이유③) 現 정권하에서 1년 2개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미 법무부 2인자로서 상고법원에 대한 기본 인식과 스탠스 구축 ⇨ 사법부와의 빅딜 가능성이나 BH의 입장 변화 등 새로운 변수 없는 상태에서 전향적 태도 기대 난망
- (이유④) 신임 법무부장관의 개인 성향상, 이미 법조계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상고법원안에 대하여, 급격한 변화보다 BH, 검찰 내부의 분위기 두루



살피며 신중한 보폭 취할 것

☑ 신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내부 인물평

①“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한다”, ②“상관을 꼼짝이 모신다”, ③“상부에 쓴 소리를 좀체 못하는 예스맨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이 사법부에 미칠 파장은 단선적 예측 곤란

- [부정적 요인] ①친검찰 매파인 민정수석, 국무총리의 그림자 성향 짙은 법무부장관 취임으로, BH·법무부 공조가 더욱 두터워지고 상대적으로 사법부가 소외될 가능성, ②정치계·재계 전반에 관한 사정 드라이브 현실화 될 경우, 신임 장관의 성향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정 수사에 총력 기울일 것 ⇨ 상고법원 등 사법부 현안에 대한 관심 더욱 저하

- [긍정적 요인] ①특수수사 경험 많은 신임 장관이 사정수사의 최종 성과 거두기 위해서는 사법부 우군화가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 가지고 있을 것, ②성완중 리스트 축소 수사 의혹, 향후 사정수사 실패 가능성 등으로 검찰 개혁의 불씨가 되살아날 경우 대비하여, 사법부와의 기본적인 공조 필요성에 무게 둘 수 있음

■ 최근 내부적 현안·관심사 등

● 검사장 자리 확대 ⇨ 법무부·검찰의 최대 관심사

- 인사적체에 따른 내부 불만 증폭의 주요 원인
-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상고검찰청 신설은 매력 없음 ⇨ ∴ 검사장 최대 2 자리 가량 불과

● 디지털 증거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 국민일보 2015. 4. 3.자 '형사소송법 개정 본격 착수' 기사

☞ 검찰, 법원의 엄격한 잣대에 위기 의식... 작년 11월 '증거법 연구회' 조직, 법 개정 추진하기까지...

☞ 김진태, 김도읍 의원 등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김도읍 의원안]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 방법 명시, 원격지 압수수색 허용 등



- [김진태 의원안]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규정 신설(기술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등),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규정 개정
- 학계와의 논의 등 공론화 작업 추진 중 ⇨ 7. 6.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 대검 과학수사부 공동주최로 디지털포렌식 워크숍 개최

● 중점 검찰청 설치·운영

- 지역적 특수성 등에 따라 특정 유형의 수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지방 검찰청 지정 ⇨ 수사의 전문성·효율성 추구
- ex) 서울남부지검 ⇨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 서울서부지검 ⇨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 울산지검 ⇨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 BH·정치권·재계와의 관계 등 외부 상황

● BH와 친밀관계 지속·강화

- 통진당 해산결정의 후광 여전 ⇨ 공로 인정에 따른 신뢰관계 확고
- 이병기 비서실장 취임 후에도, 비서실의 親검찰 기조에 변함 없음
- 성완중 前 의원 자살 사건으로 인해 내부 역학구도에 변화 요인 발생하였으나, 민정수석 등 검찰라인에 대한 VIP의 신뢰 여전한 것으로 보임
-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취임으로, BH와의 밀월관계 더욱 강화
- 유사 이래 최초로 현직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임명 ⇨ 법무부장관 개인 뿐만 아니라, 법무부·검찰 조직에 대한 VIP의 강력한 신뢰 표출
- 행정부 2인자로 공안통 검사 출신 기용 ⇨ 강력한 사정·공안 드라이브 메시지 표방

● 성완중 전 의원 자살에 따른 위기 국면 타개

- 메가톤급 후폭풍 예상하였으나,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총리 2명만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 마무리 ⇨ 다시 한번 BH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 도출
- 메르스 확산, 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흡입력 강한 초대형 현안들로 인해



일부 진보 언론 및 야당의 공세 잠식 ⇨ 수사결과 발표 직후 야당의 별도 특검 주장도 정치 쟁점에서 후순위로 밀려 큰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

● 오히려 정치권·재계에 대한 제2의 대대적 사정 착수할 분위기

- 신임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주도로 ‘사정 2라운드’ 준비 움직임 포착 ◀
포스트 유승민 정국을 ‘사정 드라이브’ 로 돌파하려는 BH 의중 함축

☑ 최근의 정치권·재계에 대한 수사 상황 등

- ▶ **[정치권]** 여야 재선의원 10여명 대상 내사 중이라는 소문
 - **[박기춘 의원]** 분양 대행업체의 금품로비 의혹 관련 소환 조사 임박
 -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 청탁 의혹으로 관련자들 소환 중
 - **[권은희 의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외압 지시 의혹 관련 위증 혐의 수사
 - **[이인제 의원, 김한길 전 의원]** 성완중 리스트 혐의 관련 추가 수사 속개
- ▶ **[재계①] 포스코 수사** ⇨ [최종 타깃]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
 - 정○○ 전 부회장 영장기각으로 주춤한 상황에서, 관계사인 동양종합건설 비자금 조성, 성진지오텍 고가인수 수사로 전기 마련 ⇨ **7. 3.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압수수색**
 - 포스코건설과 거래한 **대림산업, GS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대두
- ▶ **[재계②]** 이명박 정권 수혜기업으로 알려진 **롯데, 신세계** 등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 수사 가능성 대두

- 전임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정 정국 천명 이후 역풍을 맞았던 실패 교훈삼아,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방식의 수사 예측
- 야권 및 재계 일부와의 대립각 첨예화되더라도, BH發 사정 정국의 손발 역할 충실히 수행하여 정권 실세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 지렛대로 삼는 것이 조직에 유리하다는 판단 확고

3. 법무부 설득의 기본 방향 ⇨ 강온(強穩) 양면 설득전략에 따른 **Big Deal** 추진

▣ 상고법원안은 다른 현안과 비교불가의 절체절명 과제

- **CJ 최대 역점 사업**이자 사법부의 가장 중차대한 추진 과제 ⇨ ∴



입법 실패는 ① 대외적으로 사법부 위상 추락, ② 대내적으로 CJ의 리더십 상실이라는 최악의 위기상황 초래

- 심급체계 전반에 관한 리모델링 정책 ⇨ 신속·적정한 재판권 행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제도개선책
 - [1심] 쟁점의 조기 현출, 쟁점 중심의 충실 심리 및 실질적 증거조사
 - [2심] 심리범위 적정화
 - [3심] 대법원의 정책법원화 + 상고법원의 개별적 권리구제 기능 수행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강화

■ 그러나 법무부의 **비협조적 태도**는 상당히 **고착**되어 있고,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에 따라 큰 변화 기대할 수 없는 상황**

☑ 전임 법무부장관, 4. 8. 처장님과의 만찬 자리에서의 발언

“상고법원 도입은 일선 검찰청의 폭넓은 의견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4. 15.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행정처 기조실장·정책실장 회동 분위기

▶ [행정처] ① 상고법원안에 대한 대승적 협력 요청, ② 법무부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약속

▶ [법무부] ① 진지한 모습·발언 결여, ② 무성의하게 상고법원안의 문제점 및 각종 대안 나열, ③ 법무부는 검찰 대변 조직 아니라는 반응

☞ **진솔한 의견 교환 실패**

- [원인 분석]
 - ① 법원에 대한 반발·견제 심리 확산 ⇨ 상고법원 도입이 사법부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쉽게 동조해 줄 수 없다는 얄은 발상
 - ② 상고법원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現 입법추진 환경에 대한 자체 판세 분석
 - ③ 실리적으로 상고법원안이 법무부·검찰에 가져다 줄 이득이 없고, 그와 맞바꿀만한 등가치 현안도 없다는 인식

■ **Big Deal을 통한 국면 타개 시도**

- 법무부가 현재와 같이 **뚜렷한 의견 제시 없이 버티기로 나올 경우**



⇒ 원론적 수준의 호혜관계 조성 요청이나 감성적·정서적 관계 정립 노력으로는 성과 기대 불가

- 상고법원안 추진의 필요성·시급성을 전면에 내세운 강은(強穩) 양면 설득전략 추진 필요

▫ [압박] ① 상고법원안에 대한 협조 없을 시, 양 기관의 관계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점, ② 법무부가 막후에서 對국회·BH 입법방해전략 구사해 온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 등 엄중 경고

▫ [회유] 법무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Deal 가능한 유력한 카드 제시 ⇒ 전면 관계 단절보다는 협상 타결이 유리하다는 선택 착수 유도

4. 구체적 설득 전략

가. 협상의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 영장제도의 대대적 개혁 공론화

- ▣ 법무부·검찰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장제도의 변화를 대개로 활용 ⇒ 수사업무와 직결되어 있어,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 ① 체포·구속영장제도의 일원화 추진

- 체포는 쉽게, 구속은 엄격히 통제하는 인신구속제도 수립 표방
- 2008년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뚜렷한 개선 논의 부재 ⇒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 도래하였다고 공표

▣ ② 디지털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절차적 통제 방안 마련·통보

- 현재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사실상 일반영장처럼 운용되는 결과 ⇒ 검찰의 광범위한 별건 수사와 이를 통한 영향력 확대 초래 ⇒ 이에 대한 엄격 통제를 강구하는 방안 강구



- [ex] 수색영장·압수영장의 분리 발부 방안, 압수수색 방법의 사전 제한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 방안, 압수물 반환·폐기 의무 명시 방안,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실질화 방안, 압수목록의 교부 의무 강화 방안 등
-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들이 연구에 착수하여 가시적 연구성과 도출, 이를 토대로 ①5. 18. 경인권 영장전담법관 간담회, ②6. 2.~6. 15. 권역별 영장전담법관 간담회 개최 ⇨ 논의 결과 적절한 시점에 검찰에 통보

☑ 5. 18. 경인권 영장전담법관 간담회 논의 결과(디지털정보 압수수색 관련)

- ▶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란에 “...(컴퓨터, US, 휴대폰)...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 문구의 부기
- ▶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교부 및 목록 제외 전자정보 삭제 폐기” 문구 명기
- ▶ 현행 별지의 개정

- 언론에도 절차적 통제 방안을 공표하여 공론화하는 방안 검토

나. Big Deal을 위한 협상 카드

1) 수사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영장제도 개선 방안 제시

☐ ①체포·구속영장제도 개선

- [정책 타이틀] ⇨ 수사 효율성 제고 및 피의자 인권 보장에 기여하는 新인신구속시스템 구축
 - 법무부가 제도 개선의 주체로 나서기에 적합한 정책 과제
 - 성완종 리스트 수사 종료 후 불거질 수 있는 검찰 책임론을 희석시키거나 그에 대한 자체 개혁 방안으로 꺼내 들 수 있는 아젠다
 - 수사 편의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 간 조화로운 균형을 도모한다는 제도 개선의 명분 내세워 여론 등의 큰 관심 얻을 수 있는 방안
- [체포]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 현재 법관에 의하여 전부 심사·통제하는 방식에서 탈피 ⇨ 수사기관에



체포에 관한 상당한 재량권 부여, 수사 초기 신속한 신병 확보 가능

● [구속 심사] 체포 후 계속 신병확보 필요성 등 심사

- 사실상 체포와 구속의 일원화
- 외부에는 구속 여부에 대한 엄격 통제 방안으로 표방 가능
- 실질적으로는 체포 상태에서의 수사결과가 영장실질심사에 반영되므로, 구속을 높아질 가능성 有

● [구속 심사 후] 기소 전 보석제도와 함께 영장항고제 도입

- 법무부·검찰이 줄곧 주장해 온 영장항고제 수용
- 영장항고제를 통해 구속영장발부의 객관적 기준 수립
- 기소 전 보석제도 도입, 구속영장재청구를 영장항고제로 통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 ②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 정비 및 증거능력 인정 확대 방안

- [최근 검찰 관심사] ① 부패범죄·기업범죄 등에서 디지털 증거의 연결 저장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압수수색 필요성 주장, ② 공안사건 등에서 작성명의를 불명확한 디지털증거(ex. 북한으로부터 수신된 이메일)의 진정성립 인정에 상당한 어려움 경험 ⇨ 증거법 개정 모색

- 디지털 정보에 대한 효율적 압수수색절차 마련 ⇨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절차 보완과 함께 연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

☑ 2015. 2. 2.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자

- ▶ 압수 목적물에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포함 명시
-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보존요청 근거 마련
- ▶ 정보의 출력·복제 불가능한 경우 등 정보저장매체 압수 허용
- ▶ 압수대상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정보저장매체 등 압수수색 허용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새로운 기준 마련 ⇨ ‘反테러법’과 같이 공안사건에 특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입법 과정에서 공조 체제 구축

- 현재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모든 범죄수사에 있어서, 디지털증거에 관하여 기술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을 규정함

☑ 2015. 5. 15.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부분

- ▶ 디지털저장매체 저장 정보에 대하여 원진술자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외 디지털포렌식 조사관 증언 등 제3자의 진술 또는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도 증거능력 부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13조의2)

2) 법무부·검찰 조직 및 기능 확대 방안 제시

▣ ①검사장 자리 증설 방안

- [조직] 법무부 송무차관직(제2차관) 신설 ⇨ 그 산하에 국가송무국, 국제법무조약국 등 검사장급 보임 가능한 2개 이상의 국 설치

☑ 미국의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제도 참조

- ▶ 1870년 Judiciary Act에 의해 설치
- ▶ ①정부가 패소한 모든 사건 검토하고 상소 여부 결정, ②어떤 사건을 대법원이 심사할 것인지 의견제출, ③대법원의 모든 사건에서 미국연방을 대표
- ▶ 산하에 4명의 부차관(Deputy)과 20여명의 차관보(Assistant solicitor) 두고 있음
- ▶ 평판 높은 전문지식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받고 있음

- 상고검찰청 신설과 함께 추진 시, 최소 5명의 검사장 자리 증설 가능

- [기능①] 신설된 송무차관 조직에서 법정조언자 의견제출(Amicus curiae) 업무 적극 수행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에서 국가 의견 및 공익 대변

- [기능②] 상고법원안에 따른 대법원의 사건분류심사 절차에서, 공식적으로 사건분류 의견 개진



■ ②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검사 보임

- 파견 검사를 형사공동조 등에 투입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 법리 검토 등 역할 부여
- 대법원의 수사실무 등 형사사건에 대한 입체적 이해도 제고 ⇨ 형사재판 판례 형성에 반영
- 연구업무에 관심 있는 상당수 검사들의 선호 있을 것 ⇨ 검찰 인사 적체 해소에 실효적

■ ③ 법무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교차 파견

- 검사를 사법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형사법 관련 연구업무 부여

☑ 사법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위촉 근거 법령

▶ 법원조직법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 ②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하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 법원조직법 제76조의5(초빙연구위원)

- ① 제76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빙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법무연수원에 판사를 파견하여, 검사·수사관들 대상으로 형사재판 관련 특강, 형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업무 등 수행

☑ 법무연수원 조직 및 기능 개요

- ▶ [기획부와 교정연수부]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
- ▶ [연구위원] 형사·법무정책 수립,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 연구위원 보임자격 ⇨ 고위 공무원 단체 소속 일반공무원 or 검사
- ▶ 교수 ⇨ 자격 제한 無

- [파견요건] ① 국가기관의 파견 요청, ② 업무의 성질상 법관 파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해당 법관의 파견근무에 대한 동의, ④ 법원의 허가



- [파견요건 충족 여부] 연구업무는 형사재판분야와 밀접한 관련성 有 ⇨ 법원조직법 제50조의 「업무성격상 법관파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해당
- [파견기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연장 가능
- [검토] 직제규정(대통령령) 개정하지 않는 이상 연구위원으로 보임하는 것은 곤란, but **교수로 보임하는 것은 가능**
- 수사 및 형사재판, 형사법제도 관련 법원·검찰의 상호간 인식의 간극 좁히고, 법질서 수호 및 국민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공동의 연구성과 창출

■ 4)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

- 검찰의 이른바 '안보위해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요청
- 공안사건에 대한 법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건 처리의 일관성·효율성 도모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법원에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 등에 관한 전담 재판부 설치

■ 5) 특성화법원 설치 방안

- 검찰의 이른바 '중점 검찰청 설치 방안'에 적극적으로 대응
- 법원에서도 일부 지방법원을 특정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

3) 법무부·검찰이 추진하는 형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협조 약속

■ 1) 보호수용제 도입 방안

- 상습 살인범·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에 대해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호수용제를 도입하는 방안 ⇨ 법무부가 2014년 하



반기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

☑ 2015. 4. 9. 정부 발의 보호수용법 제정안 골자

- ▶ 재범 위험성 있는 상습 살인범(2회 이상)·성폭력범(3회 이상), 아동 성폭력범(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등 흉악범죄자를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수용시설에 수용
- ▶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청구 ⇨ 법원은 1년 이상 7년 이하 범위에서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 선고
- ▶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보호수용 집행 후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 심사·결정

- 미래의 범죄가능성 예측을 토대로 사회방위를 위해 범죄자의 신체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제도
- 보호관찰명령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인 것과 비교할 때,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이 장기임
- 가출소 심사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
- 종래 법원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재범 위험성 판단의 오류가능성 등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검토' 의견 ⇨ 법사위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묵인하는 입장으로 선회 제안
- 어차피 보호수용법 제정안은 과거의 보호감호제도의 폐단에 대한 학습효과로 야당, 학계, 재야법조,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②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 도입 방안

- 실제 수사현장에서 묵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플리바게닝을 공식적으로 법제도화하는 방안
- 뇌물, 마약, 조직폭력 사건 등에서 먼저 도입하고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협상 가능
- 성 前 의원 자살 원인의 하나로 검찰의 무분별한 플리바게닝 지적 ⇨ 단기적으로는 추진의 장애 요소일 수 있으나, 오히려 검찰 내부



에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될 수 있음

■ ③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방안 (2011. 7. 정부 제출 형소법개정안)

- 범죄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구인영장 발부받아 강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협조

■ ④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 도입 방안 (2011. 7. 정부 제출 형소법개정안)

- 뇌물범죄, 범죄단체 조직범죄 등에 대하여 범죄 가담자가 범죄규명에 필수적 증언을 한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협조

■ ⑤사법방해죄 신설 방안 (2011. 7. 정부 제출 형소법 개정안)

-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하는 공무원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를 처벌하고, ② 타인의 증언 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허위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폭행·협박하거나 타인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약속·공여·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처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
- 참고인의 허위진술로 인한 수사절차의 지연, 수사인력·비용 낭비 등 문제점 해소에 기여

다. 접촉·설득 주체, 시기 등

■ 고려 사항

- 신임 법무부장관과 신속한 접촉 필요 ⇨ 새로운 법무부 수장의 상호법원안에 대한 기본 인식 파악하고, 협조 요청할 명분 발생
- 공식·비공식 면담 자리를 통해, 여러 접촉 루트를 활용한 단계적 접촉·



설득 기회 포착

● 기존 접촉·설득전략의 궤도 수정 필요한 상황

- 전임 법무부장관,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과의 담판에서 소기의 성과 없었음
- 곧 후속 검찰 인사 가능성 제기되고 있어, 現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기조실장과의 접촉은 시기상 한계 있음

■ [1단계] 법무부장관의 **대법원장님, 처장님 공식 취임 예방 활용**

- [일정] 7. 13.(월) 16:00, 대법원장님 접견 후, 처장님 포함 대법관님들 개별 방문 예정
- 양 기관 수장들간 공식적인 환담 자리로서, 양 기관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의견 교환하기에 매우 적합
- 대법원장님 또는 처장님께서, ①상고법원안에 대한 **원론적 협조 + 상고법원 의제 다룰 수 있는 양 기관 실무자간 면담자리 속개 요청**, ②**법무부·검찰의 주요 현안 관련 건의·애로사항 수렴 의사 등 피력**
- 원론적 차원일지라도, 법무부장관의 상고법원안에 대한 견해 및 사법부에 대한 요청 사항 등 간파되면, 이를 매개로 설득 전략 수립 및 빅딜의 전기 마련 가능할 것

■ [2단계] 고교 동창인 **법원행정처 차장 접촉**을 통한 호혜 분위기 조성

- 인적 친분 관계를 활용한 정서적 접근 시도
- 법무부장관 공식 취임 방문 일정 및 7월 임시국회 상황 등 고려하여, 7월 마지막 주에 면담 추진
- 기본적으로 **법무부장관 취임 축하 자리로 주선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에 대한 동류의식을 견고히 하는 기회로 활용** ⇨ 향후 실



무진간 소통창구 개설 기정사실화하는 데 주력

▣ [3단계] 행정처 실장,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간 실무진 회동

● [면담 시기] 검찰 후속 인사, 국회 일정 등 고려 ⇨ 8월 임시국회 임박한 시점

- 7월 말, 8월 초 검찰 인사 예상되는 경우, 8월 중순경 법무부의 새로운 진용과 면담하는 것이 효과적
- 7월 임시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의 법률안 심사결과 분석 필요, 특히 검찰 출신 의원들의 전반적인 스탠스, 발언 내용, 강도 등 정밀 분석 ⇨ 대응 기조, 논리 등 재점검
- 8. 16.경 개의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임박하여, 최종 설득의 자리로 마련

● 최후 통첩식 협조 요청

- 영장제도 개선 방안, 법무부·검찰 조직 확대 방안, 효율적 수사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 등과 상고법원 도입과의 Big Deal 제안
- 상고법원 도입은 좌절 불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고지
- 협상 결렬은 양 기관의 전면적 관계단절 결과 초래할 것임을 경고 [끝].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

2018. 7. 31.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안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인식 현황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상황**
 - 최근 언론의 우호적 보도로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긍정적 기류 확산되면서, 상고법원 설치가 가져올 법관 사회의 조직체계, 인사패턴,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계층별 편차도 존재하여, 젊은 법관들은 무관심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고법 배석급 이상에서는 향후 자신들의 인사 배치 등 이해타산적 시각에서 상고법원 제도를 바라보고 있음
 - 또한, 일부 진보 성향의 판사들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해 부족한 상태에서,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반감, 소외감 등을 기저로 반대 목소리를 표면화하려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음
- **법원 내부의 이해 고취 및 결속력 강화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가시적 방안 모색 필요**
 - 법관들의 상고법원에 대한 열망과 기대는 법률안 통과와 필수 전제 조건 ⇨ 내부 구성원의 응집된 결속이야말로 외부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기반
 - 법관들의 진정한 협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피상적 내부 소통 및 홍보 이상의, 상고법원에 대한 심층 소개, 법관 개개인의 관심 사항에 대한 직접적·구체적 설명, 반대 입장에 대한 설득 논리 등 구축하여 전파하는 방안 필요



2.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 등 모색

▣ 계층별 일선 법관들의 상고법원안에 대한 주요 관심 사항, 의문점 등 파악

- [주안점] ① 일선 법관들의 진솔한 의견 청취가 관건, ② 이를 위해 다층화, 다각화된 의견 수렴 방안 모색
- [방안①] 각급 법원 기획법관들을 통해 일선 법관들의 분위기 파악, 질의 사항 등 취합
- [방안②] 상고법원 등 사법부 주요 현안 관련 법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자 입장에서 바라본 소속 법관들의 상고법원에 대한 시각 및 이해도 파악
- [방안③] 행정처 실국장, 부장, 심의관들의 개인적 네트워크 활용 ⇨ 각 계층별·직급별로 접촉 가능한 법관들로부터 상고법원에 대한 의견이나 주요 관심 사항 등 파악

▣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이해도 제고 및 설득 추진

● ㉠법원 내부용 심층 Q&A 자료집 준비

- 추출된 계층별·직급별 법관들의 관심 사항, 의문점 등 정밀 분석 ⇨ 타깃별 분류화

■ (예시 ①) 인사 발령, 보직 관점에서의 계층별·직급별 관심 사항 등

- ▶ **[지법 배석판사]** 장기적 관점에서 상고법원이 향후 법관으로서의 라이프 사이클에 미치게 될 영향 등
- ▶ **[단독판사]** 상고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전보 발령 기준, 사법부 관료화 우려 등
- ▶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법 배석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유지 여부, 현 직위에서 상고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 발령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
- ▶ **[지법 부장판사]** 상고법원 도입과 고등부장 전보 발령의 상관관계, 인사적 체 해소 기여 여부 등
- ▶ **[고법 부장판사 이상급]** 상고법관 임명 절차, 임명 기준, 상고법관 임기 만료 후 인사 패턴 등



■ (예시 ②) 상고법원 도입 취지, 제도 개요 등에 관한 의문 사항

- ▶ 인위적으로 승진 대상 보직이 늘어남에 따라 법관 관료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 ▶ 현재와의 관계에서 대법원의 최고법원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 아닌지?
- ▶ '헌법위반' 또는 '판례위반' 사유는 주장에 따라 얼마든지 성립 가능하므로, 결국 어정쩡한 4심제가 되는 것 아닌지?
- ▶ 사실심 충실화와 상고법원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와 닿지 않음
- ▶ 상고사건 적체하는 주된 이유는 대법원이 하급심의 사실인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 ▶ 대법관 증원, 상고허가제는 차치하더라도, 고법 상고부, 대법원 이원적 구성 등 상고법원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제도 개선책도 많이 있는데, 왜 상고법원 제도만을 사법부가 올인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밀어붙여야 하는가?

- 분류화된 영역별로 체계적 답변 자료 작성

● ② Q&A 자료의 효과적 활용

- 사법연수원 경력별 연수의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 강의를 통해 소개
- 각급 법원 법원장들에게 자료집 송부 ⇨ 소속 법관들과의 티타임, 오만찬 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내용 전달
- 각급 법원 워크숍, 법관 간담회, 직급별 판사회의 등을 통해 정보 제공
-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코트넷 상고법원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안 검토

■ 일부 법관의 반대 입장 외부 공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돌출 행동 위험성 높은 법관들의 상고법원 관련 입장 등 사전 점검하여 선제적 설득 작업 착수 필요
- 내부 설득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해 반대 의견 표방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위기 대응체제 가동
- 사전 분위기 감지 긴급 ⇨ 해당 법관 소속 법원장, 친분 있는 법관 등을 통한 자제 권고
- 언론사 기자 등과의 접촉을 통해, 보도 자제 또는 수위 툰다운 요청



- 보수 언론을 통해 대응 논리 유포 ⇨ 반대 입장 폄하·고립화 전략 추진
 - 종래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돌출성 언행 전력 등 부각
- 후속 보도 제지로 부정적 분위기 확산 차단

3. 향후 계획

- ▣ 일선 법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그에 대한 풍부한 답변 자료, 설득 논리 마련을 위해 기초실, 정책실 등 관련 실국간 협업 수행
 - 기동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슬림화된 소규모 팀 구성 ⇨ 기획제1심의관, 기획조정심의관, 사법정책심의관
- ▣ 법관들 인식 현황 점검 및 관심 사항 등 취합: 7. 9.까지
 - 기획법관을 통한 의견 취합
 - 7. 7. 수도권 법원장 간담회 결과 분석
 - 기타 행정처 심의관 등 개별적 법관 접촉결과 취합
- ▣ Q&A 자료집 작성 : 7. 12.까지
 - 정책실 주도로, 법관들의 다양한 관심 사항, 의문점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
 - 상고법원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가
 - 대외비를 전제로, 설득력을 강조한 진술하고 풍부한 자료집 준비
- ▣ 기타 Q&A 자료집 활용 방안 등 최종 검토 결과 보고 : 7. 15.까지

원혜영 의원은 친노와 가까움

그러나 야권내 개헌파 내에서도 '선(先) 최○○-후(後) 개헌' 기류가 고착되고 있어 이들의 기대대로 개헌론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원혜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모든 논의가 최○○ 사태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각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야권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수습되고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대선까지는 1년도 채 남지 않는다"면서 "임기 내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라고 했다.

법원, 선관위, 감사원 등 각종 헌법기관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 필요

친노로 70명

박범계, 이춘석, 금태섭
백재현 ⇨ 정세균 직계
노웅래
원혜영
이석현

당대표, 원내대표(우상호), 최고위원

10. 26. 의총 ⇨ 국회에서 개헌 국회주도
정세균은 친노와 같이 갈 수밖에 없음

[주류]

전해철, 이호철

전해철, 홍영표, 이호철

(대선 준비 중) 최재성, 진성준, 전병헌

(친노) 이용섭, 이목희

(비주류) 민병두

우상호 ⇨ 386들의 심정적 지지를 받을 뿐

전해철 > 박범계

박범계는 (중략)

개헌 논의 협의체

[민주당 내 변호사 중 우호적인 사람들]

최○○

조○ ⇨ 형법

안○○ ⇨ 노무현 정부 인권위원장, 야당 성향, 헌법

한○○

최○○

새누리당이 주장하면 야당이 반대한다.

[참여연대], [민변]

[공법분과] 서○○, 오○○

오○○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

김○○

오○○

장○○

정○○

한○○

김○○

김○○, 안○

최○○, 고○○

김○○, 김○○, 신○○

언제쯤 개헌 특위

어떤 분들이 들어가실 것 같나.

야당 의원들이 헌재와 대법원 권한 문제

황○○ 교수는 정○○ 교수의 아바타

손○○(권○○)

임○○

김○○

상고심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의견

송○○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 성향)

송○○, 양○○, 김○○

[송○○, 전○○, 이○○, 전○○, 이○○]

이○○(중앙대)

정○○ 교수님(한국헌법학회장)

송○○ 교수님(2017년 한국헌법학회장)

박○○ 한양대 교수님 (성향은 진보적)

박○○ 교수님

[개헌특위]

30년

선례가 없다

1987년 국회에서 했던 것

법사위 ⇨ 사법제도개혁특위

안행위 ⇨ 정치개혁특위

해당 법안을 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들어감 +알파
안행위 수석전문위원, 조사관

특위

본회의 ⇨ 특위 구성 결의안 의결

교섭단체간 특위 인원, 활동 기간, 활동 범위 협상

특위에 들어가는 비용(금전적, 시간적, 커뮤니케이션)

최소 30~50명(예결특위) ⇨ 분과

특위위원장 ⇨ 위원회에서 호선 (여, 야 알 수 없음)

특위

[1안] 소관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이 중심이 됨
법제실 법제연구과

분과별로 전문위원

분과 5개

[1분과] 권력구조, [2분과] 기본권+법원/헌재

[1분과] 권력구조, [2분과] 기본권, [3분과] 법원/헌재, 선관위, 감사원

원포인트 개헌 ⇨ 국민의 공감대 얻기 어려움

포괄적 개헌 ⇨

사개특위 때 (1) 법원, (2) 검찰, (3) 변호사 ⇨ 변호사 먼저 합의, 법원 쪽은 후속 합의, 검찰
은 합의가 안 되어서 합의 못함

입법조사관들은 전문위원별로 최소 3명 ~ 최대 7명

[실무지원단장]

예결특위 수석1(예산안), 전문위원1(결산안)

[실무지원단장] 제헌국회 때 유○○ 박사님 ⇨ **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국회법 제43조 전문가 활용

제43조(전문가의 활용)

- ① 위원회는 그議決로 중요한 案件 또는 專門知識을 요하는 案件의 審査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案件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있는 3인 이내의 專門家를 審査補助者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 ② 위원회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門家를 審査補助者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委員長이 議長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議長은 豫算事情등을 감안하여 그 人員 또는 위촉기간등을 調整할 수 있다.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된 審査補助者는 國家公務員法 第33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國家公務員法 第7章 服務에 관한 規定이 準用된다.
- ④ 위촉된 審査補助者에 대한 手當의 支給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議長이 정한다.

감정인처럼 의견을

헌법에 관한 전문지식은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헌법 1명, 정치학자 1명, 행정법 1명

(경제학자, 사회학자)

특위에 들어올 입법조사관,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 ① 위원회에 委員長 및 委員의 立法活動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議員 아닌 專門知識을 가진 委員(이하 "專門委員"이라 한다)과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專門委員과 公務員은 國會事務處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6.28>
- ②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8>
- ③ 專門委員은 事務總長의 提請으로 議長이 任命한다.
- ④ 專門委員은 위원회에서 議案과 請願등의 審査, 國政監査, 國政調査 기타 所管事項과 관련하여 檢討報告 및 關聯資料의 蒐集·調査·研究를 행한다. <신설 1994.6.28>
- ⑤ 專門委員은 제4항의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委員長의 許可를 얻어 委員長名義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 2005.7.28>

⑥ 專門委員은 委員會에서 發言할 수 있으며 本會議에서는 本會議議決 또는 議長의 許可를 받아 發言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법 ⇨ 사무총장 고유의 권한
“필요한 공무원”의 배치

특위위원장이 사실상 관여

사무총장

북한법연구회

블랙리스트 작성 ⇨ 안 되는 이유를 펴트려야 함

- 김○○ 등
- 헌법연구원 원장 출신

하○○ 교수 ⇨ 서울대 정○○ 교수 남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역임)

민변 사법위원회 ⇨ 위원장 성○○(울산지법 부장판사 경력)

장○○ 변호사(17기)

김○○ 변호사(17기)

정○○ 변호사(17기) - 법무법인 한결

정○○ 변호사(17기)

박○○ 변호사/의원(35기) - 법무법인 한결

송○○ 변호사(34기) - 법무법인 덕수

[더불어민주당]

7선 이해찬

6선 문희상, 이석현

5선 김종인, 박병석, 원혜영, 이종걸, 추미애

4선 강창일, 김부겸, 김진표, 박영선, 변재일, 설훈, 송영길,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이상민, 조정식, 진영

3선 김상희, 김영주, 김영춘, 김태년, 김현미, 노웅래, 민병두, 백재현, 심재권, 안규백, 우상호, 우원식, 유승희, 윤호중, 이인영, 이춘석, 정성호, 홍영표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2018. 7. 31.

박○○

1. 하야 가능성 검토

▣ [주요 변곡점] 11. 4. 대통령 제2차 대국민사과

- 검찰 수사 및 특검 수용 의사 ⇨ 이미 언론에서 예상된 내용
- '총리에 권한 이양' 언급 없음, 안보 및 경제 위기 강조, 국정 중단 불가 설명 ⇨ 국정 주도권을 포기할 의사 없음을 명확히 드러냄
- 외로움, 가족과의 절연 노력 등을 강조 ⇨ 감성에 호소하는 접근법

▣ [+] 하야 압박 요소

- ① 국정지지율 5% ⇨ 과거 YS 지지율 6%보다 질적으로 훨씬 위험

☑ 외환위기 당시 YS 지지율과의 차이

- ▶ 최저지지율 6% 당시에도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74%였음
 - 즉 답변을 유보한 나머지 20%의 경우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심정적 지지에 가깝거나, 향후 대통령의 추가 조치에 따라 긍정평가로 돌아설 여지가 있는 집단 ⇨ 대통령 하야나 탄핵 시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계층
- ▶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박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89%에 달함 (유보의견 2%, 응답거부 4%)
 - 즉 대통령 지지여론 반등의 여지가 6% 정도에 불과함
 -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부정평가가 90%로 평균보다 높음 ⇨ 지지 핵심 기반 세력의 이탈이 심각
- ▶ 외환위기는 정책의 실패, 과실 및 무능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면, 이번 사태에 대하여는 국정농단,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이 대통령 지시 하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데 대한 분노가 반영된 탓임



- ② 사과 후에도 비판 여론 강경 ⇨ **주말 광화문 집회 약 20만명 참가**
 - 중앙선데이 등 주요 언론도 ‘2번째 사과, 민심은 더 분노했다’ 는 등의 제목으로 대통령의 사과가 퇴진 요구 여론을 키웠다는 관점에서 보도
 - 전 주의 약 2만명에 비하여 참여인원 **10배 가까이 증가** ⇨ **다음 주말 참여 인원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지가** **하야 국면의 관건이** 될 수 있음
- ③ 여당의 분열과 아노미 ⇨ **여당 내부에서 하야 논의 대두**
 - 친박 핵심을 제외한 당내 ‘대통령 2선 후퇴, 지도부 사퇴’ 등 핵심 요구 사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 반발 커지고 강경한 목소리 분출

☑ 11. 5.자 세계일보 ‘아노미 빠진 여당, 내부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거론’

- ▶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변명과 꼬리자르기로 일관한 **두 번째 사과에 민심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 한 비박 의원은 “하야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과연 현 정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라며 “**국가와 당을 위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 김병준 국무총리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면 결국 하야 정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게 비박계의 지적**이다. 다른 비박 의원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야당에 하야의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지금 상황으로선 백약이 무효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을 이길 수는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 박 대통령의 **하야가 대선을 앞둔 여당에 오히려 득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최○○ 사태가 대선까지 가고 박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으로 머물면 차기 대통령을 사실상 야당에 그냥 헌납하게 되지만 **박 대통령 하야를 계기로 여당이 환골탈태한다면 야당과 승부를 벌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 여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퇴진하는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여당은 현 지도부 체제를 붕괴시키고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사실상 창당하는 정비작업**을 할 수 있다”면서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중도층 흡수력이 있는 유승민 의원 등이 비대위 위원장으로 당의 면모를 일신한다면** 최○○ 사태에 발목을 잡혀 대권을 야당에 내주는 상황을 막고 야당과 승부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 비박계는 김병준 국무총리 인준 등 정치적 상황과 여론의 동향을 지켜본 뒤, 박 대통령으로는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 퇴진 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하야가 여당의 정권재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실용적 관점의 분석의견도 여당 내부에서 제시되고 있음
- 현재까지는 비실명, 비공식 논의이나 공개 주장 대두되는 시점 주목됨
- **④ 주요 보수언론의 외면으로 孤立無援 상태**
 - 조선일보와는 전면전 수준,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해 조선일보가 친박세력 제거에 나선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
 - 단, 대통령 하야가 보수정권 연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현재와 같이 ‘거국중립내각을 통한 국정 안정, 개헌 논의’ 수준의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므로, 당장 하야 압박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음
- **⑤ 야권의 강경 대응 확산**
 - 박원순, 안철수, 이재명 등 유력 정치인이 하야투쟁 선포함은 물론, 추미애 대표도 **별도 특검·국정조사·총리철폐 없으면 정권퇴진운동 착수 선언**
 - ‘최○○ 수사 정국 및 BH 국정동력 상실’ 로 인한 **야권의 반사적 이익을 포기하고 대통령 퇴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여론에 기반한 자신감의 표현**
 - 11. 6. 민주당 이번 사태 최초로 ‘11. 12.(토) 당차원의 옥외집회’ 개최확정

☑ 일각에서는 대통령 퇴진 이후 로드맵에 대해서까지 진지한 논의 시작

▶ 심상정 정의당 대표 11. 4. 오후 ‘국가정상화 로드맵’ 발표

- 대통령 하야 후 발생할 국정공백을 메울 대안 적시함
- **① 대통령의 하야 선언, ② 과도중립내각 구성, ③ 조기대선의 3단계로 구성**
- ①단계는, 즉시 하야가 아니라 국회 주도의 과도중립내각 구성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약속 및 조기 하야를 의미
- ②단계는 국회가 선출한 총리를 대통령이 인정, **국정기조의 큰 변화나 이견 등 갈등적 현안은 차기정부로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③단계는 **내년 상반기 대선 원칙, 국회는 권력이양 일정이 확정된 직후 조기대선준비특위를 구성, 조기대선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

▶ 이낙연 전남지사 11. 5. “‘박근혜 이후’ 과도기와 그 이후 국가운영 구도에 대해 국회 지도자 및 국가원로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합의하고 국민동의를 얻는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

- 이 지사 개인의 정치적 중량감은 차치하더라도 퇴진을 당연한 전제로 한 **퇴진 후 구체적인 국정 운영 방안 논의 확산**이라는 점에서는 의미 있음



- [6] 정국 반전카드 消盡, 수사과정에서 추가 국정농단행위 발각 위험성
 - 야권과 협의 없는 김병준 총리카드 및 한광옥 비서실장 카드는 오히려 야당과 국민의 강한 비판에 직면 ⇨ 추가 쇄신카드 쉽지 않음
 - 안○○, 차○○, 장○○ 등에 대한 본격 수사 착수 시 대통령 관련 추가 범죄 드러나 여론이 더욱 악화될 위험성

☑ [참고] 미국 백악관 대변인 발언 분석

▶ 11. 2. 논평에서 박근혜 정권의 위기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토론과 논쟁에 맡겨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힘

- 통상적인 외교적 워딩에 비하여 **‘미국은 일부러 나서 그를 두둔하거나 지지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 있어 주목받음
- 다만 개별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일반론에 기한 답변으로 이해될 여지도 충분하여 특별한 논란은 없었음

▶ 11. 4.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계속 있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그녀와 거리를 두려고 하느냐”는 미국 기자의 물음에 **“강력한 동맹의 특징은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라고 답변

- “그녀가 어려운 국내정치적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 문제에 대해 내가 뭐라고 할 말은 없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 문제에 대해 공식, 비공식적으로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9월 라오스 방문 이후 그녀(박근혜)와 얘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답변
- **대통령 교체 가능성을 전제로 발언**하였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 내부적으로도 **박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적어도 관계기관으로부터 그러한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임.

■ [-] 하야 저지 요소

- [1] 제2차 사과에 대한 수용여론 38.4%에 달함 ⇨ **대통령 개인에 대한 동정 여론을 바탕으로 ‘하야 반대’ 기반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당함**
 - 사과 직후인 4일 MBN 의뢰에 따른 리얼미터 조사 결과 (531명 유무선 및 스마트폰앱 조사, 응답률 12.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4.3%)
 - 보수층, 새누리당 지지층, 60대 이상 등에서는 ‘미흡하나 수용 및 사과 충분’ 의견을 합할 경우 50%에 육박하거나 상회

차대통령 제2차 대국민 사과

단위:%



- ⇨ 감성을 내세운 사과 전략이 ① 대통령 반대층에게는 강한 반발 및 결집을 불러 일으켰으나, ② 전통적 지지층 상대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셈

● ②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여론 45%에 불과 ⇨ 국정 안정 희구 세력을 중심으로 '하야 반대' 가능성 상당함

- 위 11. 4.자 '제2차 사과 수용 여부' 여론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
- 야당의 입장에서, 또한 통상적인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야당과 협의는 물론 사전 통지조차 없었던 김병준 총리내정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
- 그럼에도 '임명 또는 청문회 후 판단' 의견이 40.7%에 달함 ⇨ 야당의 강력 반대로 총리는 결국 자진 사퇴(또는 내정 철회)할 것이지만, 국정 안정 여론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여실히 드러냄

김병준 총리 내정자 임명 여부

단위:%



● ③ 강경 보수 매체 및 세력을 중심으로 대통령 수호 의지 표출

- 11. 5. LA에서 교민들이 '대통령 하야 반대' 시위(미국 전역 지부 갖춘 자유대한지킴이 국민운동본부, 재향군인회 독립유공자 가족협의회 등 참가)



- 11. 4. 인터넷 카페 박사모 회장은 하야 등 주장은 위헌이라면서 총동원령 준비단계 발령

- [4] '대통령 하야가 정권교체에 유리'할 것이라는 야권의 확신 미약

- 보수층 결집 등 하야 후 상황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야권 입장에서는 하야 '요구' 선언을 넘어 진정으로 총력 투쟁할 수 있을지 미지수
-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된 것처럼 행동한다. 80년·87년의 역사에서 배우라. 역풍맞는다' 고 지속경고하고, 안철수 대표의 대통령퇴진운동 등에 신중함을 보이는 등 야권 내 이해관계 서로 다름

- [5] 60일 내 대선, 87년 체재 후 하야 선례 부존재 등 정치공학적 부담

-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 ⇨ 선거 90일 내에 사퇴하여야 하는 자치단체장(박원순·남경필·안희정·이재명·원희룡 등) 출마 불가로 후보 선택권 및 참정권 등 논란 소지
- 정진석 여당 대표 11. 5. 위와 같은 사정 및 '통상 대선후보 검증에 1년이 걸리는데, 60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후보경선의 절차적 정당성 등도 확보하기 어렵다' 는 점 등을 들어 하야 요구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

■ 검토

- 현 대통령의 성향 상 떠밀리듯이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대통령은 국정주도권을 놓을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드러냄

- 결국 현 상황(지지율 5%, 집회참가 인원 10~20만) 정도 지속만으로는 당분간 하야 가능성이 높지 않음

- 현재 정국주도권은 전적으로 국민 여론이 쥐고 있으므로, 향후 여론 변화 추이에 따라 대통령 하야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가능성 있음

- ex) 정○○·장○○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추가 기밀유출·거래 정황, 대북·대미·세월호 관련 국정농단 정황 등 발각으로 TK 및 60대 국정지지율 3% 급락(현재 10% 이상), 평일까지 집회참가 수십만으로 국정 마비 등

송○○

김○○

김○○

이○○

장○○

김○○

김○○

백○○

윤○○

이○○

김○○(35기)

천○○

김○○

최○○

홍○○

이○○

차○○

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참관 보고

2017. 3. 26.

사법정책실

1. 개요

- 일시: 2017. 3. 25. (토) 14:00 ~ 19:00
- 장소: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 주최: 국제인권법연구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주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 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
- 참석인원: 약 150명
 - 법관: 약 50명 내외(전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보임)
 - 기자: 약 30명 내외(KBS, JTBC 등 영상촬영)
 - 특이사항: 곽○○ 전 교육감, 윤○○ 변호사, 김○○ 주사 참석

2. 진행경과 및 논의내용

- 사전행사(14:00 ~ 14:20)
 - 개회사: 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 인사말: 김○○ 춘천지방법원장
 - 현재 진상조사 중인 사안에 관한 언급은 없었음
- 미국과 독일의 법관 인사제도 발제(14:30 ~ 15:30)
 - 독일의 사법제도에 관한 소고 - 특히 법관인사 등 사법행정을 중심으로
 - 발표: 이○○ 교수(연세대학교)
 - 발표문: 별첨1

- 미국의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무성

- 발표 강○○ 교수(연세대학교)
- 발표문: 별첨2

- 법관의 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15:40 ~ 17:10)

- 발제

- 김○○ 판사(서울고등법원)
- 발표문: 별첨3

-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본 대법원의 구성

- ▣ 대법원장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 ▣ 대법원장예의 권한 집중: 견제 받지 않는 권력, 행정조직의 비대화, 법관사회의 관료화
- ▣ 대법원 구성의 획일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의 개선 제안

- 법관 독립의 관점에서 본 법관인사제도

-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법관인사 이원화의 지속 추진
- ▣ 전보인사제도: 전면적 장기근무제도
- ▣ 사무분담: 법관들에 의한 사무분담 결정
- ▣ 법원장 호선제: 일정 경력 이상 법관 당연 후보로 소속법관 선출

- 기타

- ▣ 법관 증원, 평정제도, 직급별 판사회의 실질화, 대한민국법관협회 창설

- 법관인사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별첨4

- 지정토론

- 윤○○ 교수(연세대학교): 별첨5
- 하○○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별첨6

- 차○○ 판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별첨7

■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의 분산을 위한 5대 입법과제 제시**

1. 상급판사 중심의 행정처 해체 및 재구성 법원조직법 개정안
2. 사법정책 최고결정 기관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창설 법원조직법 개정안
3. 법원장 호선제 법원조직법 개정안
4. 각급법원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의 선거를 통한 구성과 사무분담권 부여
5. 고등부장 승진 폐지를 위한 이원화 명문화 법원조직법 개정안

- **구체적 입법 원칙:** 5대 입법과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동시추진, 대법원 규칙으로의 포괄위임 경계 및 법률조항의 구체화, 미국·독일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된 구체화, 법관인사규칙 등 기존 법령의 변용 고려

- **5대 입법과제의 궁극적 지향점:** 일본식 관료사법에서 선진국 사법모델로

■ **종합토론(17:20 ~ 19:00)**

이름	기수	소속법원	커뮤니티 등	비 고
이○○	27	인천지법 부산지원	우리법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박○○ 대법관님 배석 합리적이고 대인관계 좋음
최○○	32	서울중앙	국제인권법	활달하고 합리적임
정○○	32	서울가정	국제인권법	유스티티아 시삽(전국 여성판사의 대규모 커뮤니티) 여성 판사들에 대하여 무게감이 엄청남.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이며, 소통의 창을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함 여성법관의 대표성 뛰어남
임○○	33	서울중앙	우리법	서울가정법원 수석부 배석(2010년? 2011년?) 차분하고 합리적이며 무난함
이○○	34	수원지법 안양지원	우리법 국제인권법	오○○ 변호사 남편 다소 성향이 강하나 선을 넘는 편은 아닌 것 으로 보임
김○○	34	수원지법 평택지원	국제인권법	연극 등 문화활동 많이 함 자유분방하나 균형감각이 있음 문화 부분에 관한 상징성 있음
윤○○	34	서울중앙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커뮤니티 부시삽 -> 상징성 있음 부산가정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사업을 주 도함. 자유분방하고 직설적인 면은 있으나 선을 넘 는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오○○	36	부산지법	국제인권법	대인관계 원만하고 성실함. 다소 왕당파로 보 일 여지 있음
최○○	36	광주고법	국제인권법	밝고 차분한 성품, 합리적임
박○○	37	의정부지법	국제인권법	활달하고 대인관계 폭이 넓음
최 ○	41	부산지법	국제인권법	장애에도 불구하고 밝고 합리적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상징성
이○○	41	인천가정	국제인권법	글, 그림, 발레 등 문화에 관한 능력 뛰어남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올 정도로 적극적임 밝고 차분한 성격



이탄희 판사 관련 내용 정리

2017. 3.

○○○ 판사

이 문서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000이 작성한 문건으로 이탄희 판사의 사직서 제출을 전후하여 이탄희 판사 등 여러 명의 판사들과 대화,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메일 등을 주고받은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통신비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경 위 서

소속 : 前 법원행정처 차장(2017. 3. 19. 임기만료 퇴직)

이름 : 임종헌

1.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제한 공지관련

가. 차장과 실장들(기획조정실장,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은 평소 차장실에서 수시로 티타임을 가지는데, 티타임에서 중복가입 상태를 방치하면 ①중복가입을 금지하는 예규를 성실하게 준수한 연구회와 법관들에게만 예산 지원이나 국제화연수 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돌아가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②2017년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산이 2배 증가되었고, 늘어난 예산을 공정하게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회의 중복가입을 제외한 실질회원 수를 먼저 정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특히 2017년 5월에 예산배정을 하려면 늦어도 3월까지의 회원 수가 확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임)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입해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별 이견 없이 결정되었습니다.

나. 중복가입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연말 연초에 개헌 등 다른 중요한 현안이 많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2017년 1월 중으로 기억합니다.

다. 전문분야연구회의 특성상 법관들이 현재 맡고 있는 사무분담과 관련된 전문분야연구회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있고 사무분담이 변경되는 때가 법관들이 앞으로 잔류할 전문분야연구회를 선택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의견이 있어서 정기인사가 발표되면 중복가입해소를 위한 조치를 공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 대법원장님께서는 중복가입해소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지 않았고, 처장님께서는 티타임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지 전에 간단히 구두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금지는 2000년부터 확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원칙이고, 이미 대법원 예규에 명백하게 존재하는 내용이며, 이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예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대법원 위임전결사항 내규”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물론 처장, 차장의 결재도 필요 없이 “실.국장 전결”만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 위와 같이 중복가입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김○○ 기획제1심의관에게 2017년 2월 초까지 중복가입해소를 위한 안내문 초안을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고, 김○○ 기획제1심의관이 코트넷에 공지할 안내문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바. 2017. 2. 13.(월) 이○○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로 안내문이 코트넷에 공지되었는데, 2017. 2. 15.(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김○○ 부장판사가 위 안내문의 내용에 반대하는 글을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폰방에 게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글을 읽어 보니 이번 조치에 대한 오해가 심각하였습니다. 그 뒤 차장과 실장들이 일부 법관이기는 하지만 법관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상 그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김○○ 기획제1심의관이 전문분야연구회의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중복가입해소조치는 그 시행을 유보한다는 취지의 안내문 초안을 작성하여 차장에게 보고하였고, 차장이 2. 20.(월) 그 안내문을 일부 수정한 후 공지하였습니다.

2. 법원행정처 심의관 인사발령과 겸임해제 관련

가. 경향신문 3. 6.자 ‘법관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그 거부로 인한 징계성 인사 조치’에 관한 기사내용

■ 이○○ 판사는 2월 20일자로 부임을 앞두고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3월25일로 예정된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그러나 이○○ 판사는 지난달 법원행정처에 위법한 지시에 응할 수 없다며 강력

히 항의하고 사표제출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2월 20일 출근 2시간 만에 이○○ 판사를 원래 소속인 수도권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인사를 냈다.

나. 일자 별 상황 정리

■ 2. 9.(목)

- 수원지법 안양지원 소속 이○○ 판사를 기획제2심의관으로 겸임 발령

■ 2. 10.(금)

- 인사차 차장 사무실을 방문한 이○○ 판사와 약 1분 정도 의례적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부임 후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의 말을 하였습니다. 당시 임○○ 기획2심의관, 기획조정심의관에 내정된 윤○○ 판사도 함께 왔습니다.

■ 2. 16.(목)

- 오전 9시경 이○○ 판사가 전화로 노○○ 인사1심의관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 노○○ 심의관은 김○○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였고, 이○○ 판사는 그 무렵 이○○ 기초실장에게도 전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 노○○ 심의관이 임종헌 차장에게 이○○ 판사를 직접 만나 사직을 만류하기 위해 안양지원으로 찾아간다고 하자, 임종헌 차장은 이○○ 판사에게 장소를 불문하고 직접 면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 임종헌 차장은 오전 12시 이후 점심시간 중에 안양지원 사무실전화(당시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함)로 전화를 걸어온 이○○ 판사와 상당히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사직의사 철회를 간곡히 권유하였습니다. 임종헌 차장은 대법원 서관 3층 매화식당에서 식사 도중에 전화를 받고 3층 특별자료열람실 앞으로 이동하여 전화통화를 하였고, 함께 식사하던 김○○ 인사총괄심의관에 뒤따라 나와 옆에서 통화내용을 들었습니다.
 - 먼저 임종헌 차장이 이○○ 판사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자신은 예의바르게 성장하여 뒷사람 앞에서는 충분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면접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장이 인사발령 직후 이○○ 판사를 심의관으로 추천하였고 행정처에 부임하면 일정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실제로 추천하였는지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임종현 차장은 이○○ 판사에게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이 판사를 1순위 기획2심의관 후보자로 추천하였고 만일 의심이 난다면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인사자료를 직접 보여줄 수 있다고 강한 톤으로 이○○ 실장의 추천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 다시 이○○ 판사가 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느냐고 항의조로 말을 해서, 법원행정처는 국회, 행정부, 언론 등 대외관계에서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기관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그 기본적 역할이 있고, 전체 업무 중에서 전문분야 연구회 관련업무를 비롯한 대내업무이 차지하는 업무비중이 극히 미약하다. 이 판사가 직접 행정처에 부임해서 근무해 보면 오해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 또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없어도 제2, 제3의 유사한 성격의 단체가 필연적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없어지는 과정에서 법관사회 내부의 반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할 것인데, 이를 무릅쓰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어떻게 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 판사는 지금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있지 않으니 법관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계속하여 임○○ 판사로부터 들었는데 중복가입 정리 조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여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그러한 측면도 일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 이○○ 판사가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여 나중에 다시 전화통화를 하기로 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 2. 17.(금) 저녁 대법원장님 주최 수도권소재 주요법원 수석부장판사 격려만찬

- 김○○ 수석부장으로 부터 이○○ 판사가 2, 18.(토) 오전 9시에 전화를 할 예정이

라고 전달받습니다.

- 임종현 차장은 김○○ 수석부장에게 토요일 오전 청계산 등산을 다녀와서 이○○ 판사에게 오전 11시 무렵에 먼저 전화를 하겠다고 전달을 요청하였습니다.

■ 2. 18.(토) 오전

- 이○○ 판사는 임종현 차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안양지원으로 복귀시켜주면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조용히 재판업무에 전념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2. 18.(토) 오후

- 오후 2시경 이○○ 판사는 김○○ 수석부장과 김○○ 인사총괄 등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냄. 당시 김○○ 인사총괄은 이○○ 판사를 만나기 위해 이 판사 집 부근 약속장소로 가던 도중에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부장님

생각해봤습니다만, 모든 걸 내려놨는데 이제 와서 다시 욕심을 내고 싶지는 않다는 결론입니다.

그냥 안양에 돌아가서 조용히 재판하겠습니다.

차장님께도 괜히 혼선주지 말아주십시오.

월요일 오전까지 겸임해제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사직서 철회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어디 가서 조용히 마음 정리하고 오려합니다.

그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 오후 6시 이후 이○○ 판사는 임종현 차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사법정책연구원 부임을 권유하는 취지의 의사타진에 감정이 극도로 격앙된 상태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조건 안양지원 복귀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하였습니다.

- 임종현 차장이 고○○ 처장님에게 이○○ 판사의 안양지원 복귀 불가피성을 전화보고를 하자, 안양지원으로 복귀시키면 재판부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는 방안 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 임종현 차장이 김○○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처장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의견

을 구한 결과 이○○ 판사의 1지망이 사법정책연구원이라는 답변을 듣고, 사법정책연구원 부임을 권유하자 위와 같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조건 안양지원 복귀를 희망하였습니다.

- 그 이후 현재까지 이○○ 판사와 직접 대면접촉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2. 20.(월) 오전

- 이○○ 판사 겸임발령 해제 인사명령

다. 위 일자별 상황을 기초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① 임종헌 차장이 2. 10. 사무실에서 다른 판사들과 함께 인사차 방문한 이○○ 판사를 약 1분 정도 만난 후 사직서를 제출한 2월 16일의 점심시간 무렵까지 이○○ 판사를 직접 대면접촉을 하거나 전화통화 한 적이 일체 없어 3. 25. 공동학술대회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 판사에게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이 점과 관련하여, 김○○ 수석부장이 이○○ 판사로부터 임종헌 차장에게서 그러한 지시를 직접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임종헌 차장은 다른 행정처 실장 등을 통해서도 이○○ 판사에게 위 공동학술대회 축소지시를 하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② 차장이 행정업무경험이 전혀 없는 이○○ 판사에게 부임하기도 전에 그 직 근 상급자인 기획조정실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3. 25.자 학술행사 축소방안 마련해 실행하라'는 예민한 내용의 업무지시를 한다는 것은 현재 법원행정처의 업무처리 관행상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점, ③ 2. 18. 이○○ 판사가 차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안양지원 복귀를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상 이 판사의 의사에 반하여 겸임해제 인사명령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진 인사명령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비추어 경향신문의 '법관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그 거부로 인한 징계성 인사조치'에 관한 기사내용은 진실과 거리가 먼 명백한 허위보도입니다.

3. 특정학회 활동건제 및 특정세미나 발표에 대한 연기, 축소 압력 의혹 관련

가. 명백한 예규 위반 행위에 대한 검토

법원행정처에서는 특정 학회 활동 건제나 특정 세미나 발표의 연기, 축소를 위한 압력 등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국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한 산적한 현안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처리하기에도 바쁜 법원행정처가 특정 학회 활동 건제 등을 검토할 여유도 없습니다.

다만, 전문분야연구회는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에 근거하여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예규 제2조 제2항),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의 평가를 받으며(예규 제9조 제4항), 그 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법원행정처로부터 필요한 경비(각종 운영 경비, 국제화연수 경비 포함) 및 법원 네트워크 등 전산자원(코트넷 커뮤니티, 메일링 서비스)의 사용을 지원받는 공식적인 연구회임에도 불구하고(예규 제9조 제5항),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예규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하므로 그에 대해 검토한 사실은 있습니다.

나. 중복가입금지에 관한 예규 위반 행위

먼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중복가입금지에 관한 예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설립 과정에서 ① 창립회원들 대부분이 다른 연구회에 중복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하였던 연구회를 탈퇴하거나 새로운 창립회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보완을 하여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 또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사법정보화연구회, 젠더법연구회, 헌법연구회, 형사법연구회처럼 중복가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연구회로 지정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하였으나 ‘국제인권법’이라는 특정한 전문법률분야를 연구하는 연구회를 중복가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연구회로 지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설립과정에서부터 중복가입금지규정이 존재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의 시삽이 전산상 부여된 권한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관들을 커뮤니티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매년 100여 명의 회원을 늘리는 등 중복

가입금지에 관한 예규 조항을 적극적·고의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다른 연구회의 경우도 중복가입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대부분 전문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예규 제3조 제3항에 따라 중복가입을 하였다가 사무분담이 변경된 뒤에도 탈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소극적인 예규 위반행위로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적극적·고의적인 예규 위반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다른 산적인 업무들로 바빠서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2016. 12. 21.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하반기 예산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지적되었고, 마침 2017년도에 관련 예산도 2배 증액되어 예산 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실질적인 회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기에, 2. 13.자 공지글을 통해 중복가입해소조치를 실시한 것입니다. 국회 법사위 또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서 “각 연구회가 전문분야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맞추어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는 지속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향후에는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개선 도모를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복가입해소조치는 특정 학회 활동 견제 및 특정 세미나 발표에 대한 연기, 축소 압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규 위반 상태가 더 심화되기 전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것입니다.

다.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에 관한 예규 위반 행위

다음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부 회원들은 2015. 7. ‘인권과 사법제도 연구를 위한 소모임’(이하 ‘인사모’)을 결성하여 상고법원, 사실심충실화, 바람직한 합의부의 조직과 운영 등 ‘국제인권법’과 무관한 ‘주요 사법행정 현안’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함으로써 ‘전문법률분야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예규를 위반하였습니다.

법관들이 ‘주요 사법행정 현안’에 대한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토론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전문분야연구회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고 법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기구로서 ‘전문법률분야’의 연구를 하는 것으로 예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한정된 예산(2016년까지 연 1억원)으로 육성이 필요한 전문법률분야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분야 연구회의 신규 설립을 엄격하게 규제해 왔고, 그 결과 손해배상연구회 등 여러 연구

회의 설립허가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총 15개의 전문분야연구회는 각자 할당받은 특정 전문법률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각종 경비 등 예산 지원, 국제화연수 비용 지급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연구회가 당초 설립허가 받은 목적을 벗어나서 무리하게 연구 영역을 넓히면 다른 연구회의 입지가 좁아질 뿐만 아니라 당초 설립허가 받은 영역에 대한 연구도 소홀해 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연구회 제도의 존재 의의가 반감됩니다. 이와 같은 제한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연구 활동을 하고 싶으면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따라 커뮤니티(예: 과태료재판커뮤니티, 해사법커뮤니티 등)를 만들 수도 있고, 독서모임이나 토론모임을 조직할 수도 있을 것이며, 우리법연구회나 민사판례연구회처럼 법원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학술단체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는데, 2009년도에 우리법연구회를 전문분야연구회로 전환하려 하였으나 '우리법'이 특정한 전문법률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1년에는 '국제인권법'이라는 특정한 전문법률분야를 연구하겠다고 하여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설립허가 신청서에는 주요 연구 대상으로 ① 국제인권법조약 연구, ② 북한 인권문제 및 탈북자 인권문제, ③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④ 국제결혼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⑤ 기타 사회적 이슈가 되어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될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그 설립허가 심사단계에서부터 '특정 전문법률분야 연구'라는 설립목적이 문제되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 연구'라는 설립목적을 준수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들이 인사모를 만들어서 설립목적과 무관한 '주요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전문분야연구회의 설립 취지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던 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인사모 회원들에게 인사모의 활동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서 예규 위반임이 명백하므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이름으로 인사모 활동을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하였으나, 인사모 회원들은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므로 상고법원 등 사법부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인권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사모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으나(예규 제9조 제5항의 반대해석상 법원행정처는 예규를 위반한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해 예산 지원을 축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반발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소모임인 인사 모의 예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토한 적은 있지만, 이는 특정 학회 활동 견제 및 특정 세미나 발표에 대한 연기, 축소 압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4. 요청하고 싶은 사항 등

저는 진실과 거리가 먼 명백한 허위보도로 인하여 30년의 법관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규명되어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7. 3.



현안 관련 추가 물적 조사 여부 검토

2017. 4. 27.

기획재2심의관실

1. 추가 물적 조사를 하는 경우

√ 기존 자료가 삭제되어 어떤 내용의 자료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삭제된 자료가 복원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복원될 것인지 알지 못함

■ 특별한 내용의 자료가 없는 경우

- [A] 의혹 상당 부분 해소되고 상대적으로 차분한 후속 조치, [B] 복원되지 않은 자료 중에 중요한 자료가 있을 것이라는 추가 의혹 제기

법원행정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B]의 가능성 매우 높음
→ 물적 조사를 하더라도 사건해결 난망

- ❖ 단, 물적 조사 이전에 해당 컴퓨터의 기억저장장치가 상당 부분 삭제되었음을 선결적으로 인정하고, 그 삭제에 대해 지시가 있었는지는 현재 행정처에 있는 사람들로서도 알아내지 못한 상황임을 미리 공지한다면, [B]의 가능성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음 → 단, 삭제행위자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고, 삭제 행위에 관한 별도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

■ 심각한 내용의 자료가 있는 경우

- [A] 현 상황보다 훨씬 강한 후폭풍 발생, [B] 충분한 조사에 따른 판사사회의 수궁

보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계획이 실제로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A]의 가능성 극히 높음

- ❖ 기획1의 컴퓨터 이외에 관련자들의 컴퓨터 모두에 대해 조사를 하자는 요구가 비등하게 될 수 있고, 내용의 심각성, 구체성에 따라서는 형사사건으로 변질 가능성도 높음



2. 추가 물적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 [A] 다수 판사들이 수궁하여 수습 국면으로 전환, [B] 지속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외부기관의 전면적 개입까지 발생

판사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A]의 가능성 있음

- 문제는, 다수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관련 당사자들이 문서 내용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관련 파일들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삭제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복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외부기관에 복구를 맡긴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 및 보안 우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문서가 나오는 경우 정치적 분쟁에 휘말릴 우려, 법원행정처 내의 다른 컴퓨터 등 물적 조사 확대로 이어져 끊임없는 의혹 제기와 추가조사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

■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 [A] 사후 수습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 지속, [B] 조사결과발표 직후에만 추가 조사에 대한 거센 요구가 있다가 사후 수습 결과에 따라 진정 국면으로 진행

현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지속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불신이 강화되는 [A]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단, 법원행정처 내의 컴퓨터에 대한 외부기관의 강제적인 조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물적 조사 자체는 끝까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추가 조사를 하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느냐,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음
- 그러나 법관 사회의 불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리더십 상실, 사법부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와 같은 무형적 자산의 상실도 경시하여서는 안 된다고 봄



3. 소 결

[요약] 현상태에 비춘 이후 상황

① **최선의 경우**

자료 복원과 함께 추가 물적 조사를 함 → 별다른 자료가 없음 → 후속 조치를 통한 진정국면

② **차선의 경우**

물적 조사를 거부함 → 초기의 거센 정치적 비난을 감수 → 상당한 폭의 개선조치를 통한 민심수습

③ **차악의 경우**

물적 조사를 함 → 심각한 자료가 나옴 → 관련자 다수 징계, 대법원장 리더십 약화

④ **최악의 경우**

물적 조사를 거부 →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다가 외부기관에 의한 자료 강제 공개 → 관련자 다수 징계, 대법원장 리더십 상실

의혹발견여부 물적조사여부	미발견		발견	기대값
실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가능성 15%) +10	복원 상 문제점 등 추가 의혹 제기 (가능성 5%) -2	극심한 후폭풍 (가능성 80%) -10	-6.6
미실시	다수 판사들이 수궁하고 개선방안 논의에 집중 (가능성 30%) +2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의 사실상 고착화 (가능성 60%) -5	최악의 후폭풍 (가능성 10%) -20	-4.4

- 결국 미실시로 인한 평균적 기댓값이 더 높으나, 최선의 기댓값은 물적 조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임
- 미실시를 하면서 기댓값을 높이려면 개선방안 논의에 집중될 여건 마련



상고법원 관련 내부 관심도 및 인식 제고 방안

2015. 7. 9.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에 대한 내부 관심도 및 인식 제고 필요성

- 상고법원에 대한 법관들의 지지와 기대는 법안 통과에 필수조건임
- 그간의 내부소통 및 응집노력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측면 ⇨ 내부 관심도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층화·다각화된 소통 방안** 검토 필요

■ 법관을 상대로 한 **①설명 및 정보제공의 방향성을 먼저 설정하고,** 그에 따른 **②구체적 시행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2. 설명의 방향성 설정

■ 기본원칙

- **①법관의 계층별·직급별 관심사항과 의문점을 추출하여 그에 대응하는 **최적의 맞춤형 정보제공****
- **②인사정책 등 일선 법관들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중심으로 정보제공함으로써 관심 유발
- **③언론을 통하여 단편적으로 접한 왜곡된 정보와 피상적인 이해로 인하여 상고법원안에 대한 **오해가 누적된 상황**** ⇨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명확한 설명** 필요
- **④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사법부 비전에 대한 **가치 공유**를 통해 **일체감과 몰입감** 부여 ⇨ 심정적 결속 강화로 법관 개개인의 상고법원 전도사 역할 기대 ⇨ 입법 추동력 극대화**



▣ 계층별·직급별 관심사항 추출

▶ [고법부장 이상의 법관 그룹]

- 상고법원 신설에 따른 상고법원 판사 임명 규모, 대상 범위 및 시기 등
- 상고법원과 대법원의 관계 및 고등법원 형해화 우려
- 상고법원 도입 성부가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

▶ [지법부장 그룹]

-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따른 고법부장 공석 규모 등 인사에 미치는 영향
- 상고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4심제 우려

▶ [단독판사 그룹]

- 상고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및 대상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축소 여부
- 상고법원 설치로 (특히 도입 초기) 상고심이 사실인정에 더욱 적극 개입할 것인지 여부 및 하급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여부
- 상고법원 추진 배경 및 법관 관료화 우려

▶ [배석판사 그룹]

- 상고법원과 일선 법원의 관련성
- 사실심 충실화와 상고법원의 관련성
- 상고법원에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

▣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설명 전략①] 지법부장 이상 그룹 ⇨ 비전 공유

● ①상고법원 신설에 따른 대법원의 정책법원化 ⇨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 위상 강화

- 국가의 법질서를 종국적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와 통합을 주도하여 국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명실상부한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 구축
- 법치주의 구현, 사회통합, 규범담론 등에 관한 논의의 질과 양의 모든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압도 가능

● ②상고법원의 충실한 권리구제기능 및 심리불속행 폐지 ⇨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 국민의 만족도 제고로 사법부 전체 위상 강화

- 법무부 등과의 관계에서도 차별화된 위상 확고히 할 수 있음



● [3] **심급체계 전반에 관한 리모델링 정책** ⇨ 사법부 장기 비전

[**사실심으로서 1심**] 쟁점의 조기 현출, 쟁점 중심의 충실 심리 및 실질적 증거조사
⇨ 원칙적으로 사실심리 종결
[**사후심으로서 2심**] 심리범위 적정화 ⇨ **장기적으로 항소법원 설립 추진**
[**최종심으로서 3심**]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 + 상고법원의 권리구제 기능

● [4]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 높다는 **긍정적 메시지 전달**

- 6월 임시회에서 입법 무산으로 19대 국회 처리가 어렵다는 우려 해소 필요

■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설명 전략²] **단독판사 이하 그룹** ⇨ **오해 해소를 통한 부정적 선입견 불식 및 구체적 이해관계 설명**

● [1] **도입필요성과 배경에 대한 근본적 오해 해소**

- 대법원 사건 부담 경감을 위한 대증적 처방이 아니라 심급구조 전반을 개선 하려는 장기적 비전과 최고법원으로서 정책법원 구현을 위한 청사진의 일환임
- 수뇌부 몇 명의 의견이 아니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제도임
- **국민을 위한 상고심 개선 방안**이고, 사법부 상층부를 위한 방안이 아님

● [2] **사실심 관여 및 관료화에 관한 우려 불식**

- 항소심의 사후심化, 상고심의 법률심化를 지향하는 사법부 장기 비전에 비추어 사실심 관여 확대 가능성 없음
-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의 실질적 추천권 행사 등으로 인사권 내려놓는 방안 추진하고 있어 법관 관료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함

● [3] **바람직한 재판 구현 및 법관의 자부심 고취 방안임을 안내**

- 사실심 충실화 방안 등은 재판의 중심을 사실심에 두려는 정책으로서 사실심 법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메시지 표명
- 대법원의 정책법원化에 따라 퇴임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도 해소될 것임

■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설명 전략³] **직급별 인사 관심사항 안내**



- 내부 설명의 기회를 통해 상고법원 판사 수, 임명방식 및 예상임기, 연구관 운영 문제 등을 안내할 필요 있음

☑ 인사 관련 직급별 관심사항

- ▶ **[지법 배석판사]** 장기적 관점에서 상고법원이 향후 법관으로서의 라이프 사이클에 미치게 될 영향 등
- ▶ **[단독판사]** 상고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전보 발령 기준 등
- ▶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법 배석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유지 여부, 현 직위에서 상고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 발령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
- ▶ **[지법 부장판사]** 상고법원 도입과 고등부장 전보 발령의 상관관계, 인사적체 해소 기여 여부 등
- ▶ **[고법 부장판사 이상급]** 상고법원 판사 임명 절차, 임명 기준 및 임기 만료 후 인사 패턴 등

- 출력물이나 파일 형태로는 배포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로 예상 인사경로 등 법관의 인사에 미치는 영향 설명 가능

3. 구체적 방안 검토

▣ [방안1] 법원장 순회 간담회

- [개요] 일선 법원의 여론을 주도하는 법원장과의 권역별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내부 소통 강화 계기 마련
- [목적]
 - 대내적으로, 소속 법관을 비롯한 법원 가족들의 상고법원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내부 구성원 결속 방안에 대한 쌍방향 의견수렴
 - 대외적으로, 지역 언론, 유관기관 또는 유력 인사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방안 등 논의
- [시행 형태 및 일정] 비공식적 회합 형태로 진행 + 권역별 분리시행
 - 수도권 7. 7. 시행 / 충청·호남권 8월 예정 / 영남권 8월 예정
- [간담회 결과 활용] 결과 분석을 통해 하반기 홍보전략 등 상고법원 입법추진에 반영 + 필요시 논의사항 내부 전파·공지



□ [방안2] 행정처 순회 간담회 개최 ⇨ 전국 법원 로드쇼 형태로 시행

● [목적] 충실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대면 간담회에서의 스킨쉽과 피드백을 통하여 공감대 형성과 심정적 결속 강화**에 도움

● [형태] 각급 지방법원별 순회간담회

- 전국 법원을 순회함으로써 상고법원 도입의 **중요성을 법관들이 체감**하는 분위기 조성하여 **결집 및 단속 효과 극대화**

☑ 행정처 순회 간담회 선례

▶ 2003년 '형사 신방식' 도입 및 사법개혁위원회 출범 당시 행정처 차장(송무국장 및 심의관 수행)이 전국 법원 순회하며 형사법관 간담회 ⇨ 공판중심주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사법개혁 관련 여론 수렴하는 성과

▶ 구술심리 강화시 정책총괄, 전자소송·법정녹음제도 도입 등 재판제도 변화시 평심의관이 각 전국 법원 순회 설명회 개최

- 간담회 전후로 해당 법원 **법관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결합**함으로써 홍보 및 관심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법관들의 의견도 충실히 수렴 가능

☑ 효율적 간담회 형태 모색

▶ '강당에 모든 법관을 모아놓고 하는 설명회' 형식 지양 ⇨ 이미 법원장, 수석부장 등의 반복된 강조로 상당수 법관은 일방통행식 간담회에 **피로감** 느낄 수 있음

▶ 각 직급별 법관대표를 포함하여 각 법원에서 **상고법원에 관한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는 법관들과 식사 또는 다과를 겸한 **쌍방향 간담회** ⇨ **다수의 소극적 지지자보다는 일선 법원별로 소수라도 적극적인 지지자가 필요한 상황임**

● 구체적 일정 및 참석자

- 각 고법과 그 소재지 지법 및 가정법원, 서울가정과 행정법원을 하나로 묶어 개최한다면 **총 19회** 예상 ⇨ **약 9주간 매주 2회씩 시행하여야 함**

- 국회일정(7. 16. 및 20. 제1소위 개최)을 고려하고 한정된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소규모 법원인 춘천, 청주, 울산, 창원, 전주, 제주 제외 가능

- **수도권지역 법원을 먼저 시행**함이 효율적임

- 간담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실장급 이상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회일정 등 고려하여 국장 및 평심의관이 시행 가능



▣ [방안3] 각급 법원 소식지 및 법원사람들 등의 매체 활용

- 1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매체를 활용한 홍보
- 코트넷을 통한 정보제공보다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장점
 - 코트넷으로는 하기 어려운 ‘상고법원 경품 퀴즈’ 등의 아이템도 활용 가능
- 심도 있는 연재기획도 가능

▣ [방안4] 계층별·직급별 맞춤형 설명을 위한 법원 내부용 심층 Q&A 자료집

- [개요] 계층별·직급별 법관들의 관심 사항·의문점 등 정밀 분석 ⇨ 분류화된 영역별로 체계적 답변 자료 작성(7월 3째주까지 완성 예정)
- [활용방안]
 - ①사법연수원 경력별 연수의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 강의를 통해 소개
 - ②각급 법원 법원장들에게 자료집 송부 ⇨ 소속 법관들과의 티타임, 오만찬 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내용 전달
 - ③각급 법원 워크숍, 법관 간담회, 직급별 판사회의 등에서 기획법관이 위 자료집을 기초로 프리젠테이션

▣ [방안5] 법원에서 생성되는 문건에 상고법원 로고 자동 표시

- 문서에 로고 생성 ⇨ 상고법원 접촉 기회 확대를 통한 친밀도 증대
 - 법원의 안내문, 공문 등에 현행 대법원 로고 대신 상고법원 로고 자동 생성
 - 외부는 물론 내부 구성원에게도 효과 있음
 - 상고법원 노출 및 접촉기회 극대화를 위한 소법원적 홍보 방안의 일환

▣ 그 밖의 소법원적 홍보 방안

- 가용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야 하는 상황임
 - 그 중 내부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 모색

☑ 참고사례 ⇨ 일본 2009년 재판원제도(배심원 유사) 도입시 소법원적 홍보



- ▶ '재판원의 여신'이라는 홍보학습만화 발간
- ▶ 유명 배우 출연하는 홍보드라마 '해매는 벚꽃' 후지TV 등 방송 및 홈페이지 게시
- ▶ 홍보노래는 물론 TV CM 지속 노출
- ▶ 재판원 제도 관련 홍보용 오락게임 발매 등 전방위 홍보

● 내부용 상고법원 해설 동영상 속편 제작 방안

- 법안 발의 직전 코트넷에 게시한 '핵심정리 상고법원' 동영상의 속편 제작
- 당시 동영상에 대한 반응 긍정적이었음
- 법안 발의 이후 상고법원의 경제적 효용 등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제작

● 전국 법관 토론회 개최 방안

- 사법연수원이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또는 희망 법관이 참여하는 상고법원 관련 토론회 개최
- 일선 법관의 관심도 및 상고법원 논의·도입에 관한 절차적 정당성 강화
- 특히 우리법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반대 법관들이 세 결집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전국 법관 토론회를 통해 상고법원의 정당성을 확인받는 절차 요건할 것임

● 코트넷 상고법원 게시판 효율적 활용

- 상고법원 게시판 방문하는 법관 수 상당함

☑ 주요 게시글 조회수

- ▶ 주요 언론보도 정리 게시물 ⇨ 1,849회, 방송보도 정리 게시물 ⇨ 1,359회
- ▶ 상고법원 관련 법안심사 일정 안내 게시물 ⇨ 1,543회
- ⇨ 조회한 순 인원수(한 사람이 여러 번 조회한 경우에도 1회로 처리)이므로, 일반적이 일부 포함되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수치임

- 상고법원 웹툰 등 對국민 홍보용으로 만든 홍보물을 모르는 법관 다수 ⇨ 위 게시판에 게시하여 법원 구성원들부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그 밖의 다양한 홍보물 적극 게시

● [全법원적 홍보시 유의사항] 공감대 결여된 채 같은 정보에 단순 반복 노출되는 것은 구성원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음